대한민국정부

관보

http://gwanbo.korea.go.kr

제18413호(그2) 2014. 12. 19.(금)

2014.12.19일자는 정호,
(그2)로 발행됩니다.

【조 약】

○조약제2215호(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 2

발행 행정자치부 문의 ☎2100-3310, 2100-3312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조 약

2014년 4월 1일 제1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4월 8일 서울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Andrew Robb 호주 외교통상부 통상투자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4년 12월 2일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고, 상호 합의한 일자인 2014년 12월 12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4년 12월 19일

국 무 총 리 정 홍 원

국 무 위 원
외교부장관 윤 병 세

◉조약 제2215호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이라 한다)와 호주 정부(이하 "호주"라 한다)(이하 "양 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 간 오랜 우호 및 협력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자유무역지대가 양국의 영역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확장되고 안전한 시장을 창출하고, 투자를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환경을 창출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그들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예상하며,

경제적 및 사회적 이익을 가져오고,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며, 양국 국민의 생활 수준을 증진시키는 보다 긴밀한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장려하고,

양국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유익한 규칙을 제정하고, 양국 간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할 것을 추구하며,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예측가능하고, 투명하며, 일관된 사업환경을 증진시키고,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호혜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양국 경제의 역동적 분야 내 그리고 그 분야들 간에 강한 유대관계를 증진할 것을 희망하며,

경제적 관계의 확장이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다자적, 지역적 및 양자적 협정과 약정상의 그들 각각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며,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 축소를 추구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경제적 지도력을 증진하기를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 1 절
최초규정

제 1.1 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제 1.2 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기존의 양자 및 다자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2. 이 협정은 상품 · 서비스 · 투자 또는 인에 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규정하는 양 당사국 간의 국제법적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협정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검토하여 공동으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서로 즉시 협의한다.

제 1.3 조
의무의 범위

1. 국제관습법에 따라, 그리고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대한 당사국의 준수를 관정하기 위한 목적상,

가. 중앙, 지역 또는 지방정부에 의한 그 당사국의 정부 권한의 행사 또는 행사의 실패, 또는

나. 중앙, 지역 또는 지방정부에 의하여 위임된 그 당사국의 정부 권한의 행사 또는 행사의 실패는

당사국 정부권한의 행사 또는 행사의 실패로 간주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포함된 내국민 대우 의무는 중앙, 지역 및 지방 정부에 적용되며 당사국의 지역 또는 지방정부가 부여하는 그 대우는, 그러한 내국민 대우 의무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지역 또는 지방정부가 속한 당사국의 모든 상품, 서비스, 인 또는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그 지역 또는 지방정부가 부여하는 최혜국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제 2 절
일반적 정의

제 1.4 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중앙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중앙 정부, 그리고

나. 호주의 경우, 코먼웰스 정부

적용대상투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이후 설립 · 인수 또는 확장된, 그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로서, 관련 장에서 정의된 것을 말한다.

관세행정기관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관세청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호주의 경우, 관세 및 국경보호부 또는 그 승계기관

관세란 모든 관세 또는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하나,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GATT 제3조제2항,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후속 협정의 상응하는 조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제6장(무역구제)에 합치하는 조치의 결과로 징수된 추가 관세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라. 부록2-가-1에 설정된 수입수량제한 또는 관세율할당의 운영에 관한 모든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대하여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관세평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이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기업이란 회사 · 신탁 · 파트너십 · 단독소유기업 · 합작투자 ·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기존의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자유사용가능통화란 국제통화기금이 그 「협정」에 따라 결정한 "자유사용가능통화"를 말한다.

GATS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당사국의 상품이란 1994년도 GATT에서 양해되는 것과 같은 국내 상품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하며,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을 포함한다.

정부조달이란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을 획득하거나 그 사용을 확보하는 과정을 말하고,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것이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란 양 당사국이 각 당사국의 관세법에서 채택하여 시행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와 그 일반해석규칙, 부의 주, 그리고 류의 주를 말한다.

수입허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동위원회란 제21.3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지방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정부, 그리고

나. 호주의 경우, 지역정부 산하의 모든 정부

조치는 모든 법 · 규정 · 절차 · 요건 또는 관행을 포함한다.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국적법」상 의미에서 한국의 국민, 그리고

나. 호주의 경우, 2007년 「호주시민법」에 정의된 호주의 시민인 자연인, 또는 1994년 「이민규정」에 따라 정의된 영주권자인 자연인

원산지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당사국의 인이란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특혜관세대우란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라 적용가능한 관세율을 말한다.

지역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지역정부"는 적용가능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나. 호주의 경우, 호주의 주, 호주 수도 특별구역, 또는 노던준주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제1항에 언급된 조치를 말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기업이란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소유지분을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1].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영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나. 호주의 경우, 호주의 영역으로서,

1) 노퍽 섬, 크리스마스 섬, 코코스 (킬링) 제도, 애쉬모어와 카르티어 제도, 허드섬과 맥도널드 제도 및 코랄시 제도의 영역 외에 모든 외부 영역을 제외한다. 그리고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소유지분을 통한 지배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일 수 있다.

2) 국제법에 따라 호주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호주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을 포함한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다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란 세계무역기구(WTO)를 말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에 마라케쉬에서 채택된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을 말한다.

제 2 장
상품 무역

제 2.1 조
적용범위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당사국의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 2.2 조
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와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2.3 조
관세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3.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어느 시점에서든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인하할 경우, 그 관세율이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따라 계산된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관세율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무역에 관하여 적용된다.

4.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양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기로 한 양 당사국의 합의는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 부속서 2-가의 양국 양허표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하여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일시적으로 일방적인 감축을 한 후에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제 2.4 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경우에 관세없이,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그 상품을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나. 수리 또는 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

2. 어떠한 당사국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목적상, 수리 또는 개조는 다음의 작업이나 공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또는

나.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제 2.5 조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그 견본품이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해서만 수입될 것, 또는

나. 그 광고물이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그러한 광고물의 1부를 초과하여 담고 있지 아니할 것과 그 광고물 또는 그 포장 어떤 것도 더 큰 탁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할 것

제 2.6 조
수입 및 수출 제한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모든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모든 상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당사국이 1994년도 GATT 제11조제2항가호에 따라 식료품 또는 에너지 및 광물 자원에 대한 수출 금지 또는 제한의 채택을 제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식료품 또는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적절히 고려하면서, 그러한 제안된 금지 또는 제한을 필요한 한도로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나. 그러한 제안된 금지 또는 제한과 그 이유를 그 금지 또는 제한의 성격 및 예상되는 기간과 함께, 실행 가능한 한 사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그리고

다.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된 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제 2.7 조
수입허가

1. 어떠한 당사국도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신속하게, 각 당사국은 기존의 자국 수입허가절차가 있을 경우, 그 수입허가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그 통보는

가. 수입허가협정 제5조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과 합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3.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을 정부의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 또는 단일의 관보에 공표한다. 가능한 한도에서, 그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21일 전에 그렇게 한다.

제 2.8 조
행정 수수료 및 형식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 및 그 주해에 따라 수입이나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성격 여하를 불문한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관세,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적용되는 내국세 또는 그 밖의 내국 부과금에 상당하는 부과금, 그리고 제6장(무역구제)에 합치한 조치의 결과로서 징수된 모든 추가적인 관세는 제외한다)이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인 비용으로 금액이 한정되도록, 그리고 이것이 국내 상품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나 재정적 목적을 위한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련 수수료 및 부과금을 포함한 영사거래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자국이 부과하는 수수료 및 부과금의 현행 목록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유지한다.

제 2.9 조
수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어떠한 당사국도,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한 상품에 대하여도 관세, 조세 또는 부과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그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제 2.10 조
비관세조치

1. 제19장(투명성)에 더하여,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조치의 투명성 보장이 중요하다는 것과 그러한 조치가 양 당사국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제21.4조(위원회 및 작업반)에 설치된 상품무역위원회는 당사국이 특정한 비관세조치를 확인할 때 그 조치를 검토한다. 상품무역위원회는, 그러한 조치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조정 메커니즘, 기술회의, 위원회 또는 작업반이 있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이 그러한 조정 메커니즘, 기술회의, 위원회 또는 작업반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이후에만, 그 비관세조치를 검토한다.

3. 상품무역위원회는 제2항에서 언급된 비관세조치에 대해 양 당사국 간의 교역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고, 되도록이면 12개월 내에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그 검토 결과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필요한 경우, 상품무역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권고사항은 검토 및/또는 조치를 위해 공동위원회의 차기 회의에 제출된다.

제 2.11 조
상품무역위원회

1. 제21.4조(위원회 및 작업반)에 따라 설치된 상품무역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상의 관세 철폐 가속화와 적절한 경우 그 밖의 사안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나.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다루고,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권고사항과 함께 그러한 사안을 공동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2. 위원회는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품무역과 관련된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제 2.12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이란 개별적으로 또는 선적된 대로의 총계로 일시적 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규정 또는 절차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치를 가지거나, 표시·파열·천공되었거나 달리 처리되어 판매 또는 상업적 견본품 이외의 용도로는 부적합한 상업적 견본품을 말한다.

영사거래란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 적하목록, 선적자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통관서류를 위한 영사 송장 또는 영사 비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한쪽 당사국의 상품이 수출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입 당사국 영사의 감독을 위하여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말한다.

수입허가란 수입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통관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 이외의 것)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인쇄된 광고물이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49류에 분류된 상품으로서, 소책자, 팜플렛, 전단지, 거래 카타로그, 업종별 단체가 발간한 연감, 관광진흥 자료 및 포스터를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촉·선전 또는 광고하는 데 사용되거나, 본질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하여 의도되고,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부속서 2-가
관세 철폐

제 1 절
한국 관세양허표

1. 한국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K)와의 관계: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HSK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HSK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기준관세율: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10년 1월 1일 발효 중인 한국 최혜국 관세율을 반영한다.

3. 양허단계: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은 제2.3조에 따른 한국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적용된다.

가. 단계별 양허유형 "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의 발효일에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단계별 양허유형 "3"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3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 단계별 양허유형 "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라. 단계별 양허유형 "7"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마. 단계별 양허유형 "1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바. 단계별 양허유형 "12"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2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사. 단계별 양허유형 "13"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3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아. 단계별 양허유형 "1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자. 단계별 양허유형 "17"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7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차. 단계별 양허유형 "18"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8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카. 단계별 양허유형 "2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20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타. 단계별 양허유형 "B"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50퍼센트를 인하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 관세율이 유지된다.

파. 단계별 양허유형 "S-1"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1)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의 발효일에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2)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하. 단계별 양허유형 "S-2"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1)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그리고

2)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종가세 30퍼센트로 인하된다. 관세는 이행 2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거. 단계별 양허유형 "S-3"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1) 10 월 1 일부터 3 월 31 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그리고

2) 4 월 1 일부터 9 월 30 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8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8 년차 1 월 1 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너. 단계별 양허유형 "S-4"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1)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그리고

2)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종가세 24퍼센트로 인하된다. 관세는 이행 2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더. 단계별 양허유형 "S-5"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1) 1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그리고

2)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러. 단계별 양허유형 "E"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그리고

머. 단계별 양허유형 "R" 로 규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 관세에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상의 어떠한 규정도 2005년 4월 13일자 세계무역기구 문서 WT/Let/492(양허표 LX-대한민국의 수정 및 정정의 인증본) 및 그 개정에 규정된 약속의 이행에 대한 한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기준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한국 양허표에 표시된다.

5.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리거나,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최소한 가장 근접한 원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6. 이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년차**란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를 말한다.

7. 이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록 2-가-1

한국

1. 이 부록은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율할당(TRQs)에 적용되며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에 한국이 적용하는 관세율할당을 반영하는 한국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K)에 대한 수정을 규정한다. 특히, 이 부록에 포함된 호주 원산지 상품에는 HSK의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에 명시된 관세율을 대신하여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HSK의 그 밖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록에 기술된 물량의 호주 원산지 상품은 이 부록에 규정된 대로 한국 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이 허용된다. 더 나아가,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따라 호주로부터 수입된 원산지 상품의 어떠한 물량도 HSK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2. 한국의 법적 및 행정적 수입 요건을 충족하는 당사국의 모든 기업이나 국민은 이 관세율할당에 따라 쿼터 배분에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3. 각 당사국은 이 부록에서 규정된 관세율할당을 1994년도 GATT 제13조 및 그 주해와 수입허가협정에 따라 이행하고 운영한다.

4. 각 연도에 걸쳐 한국의 운영당국은 각 관세율할당의 운영절차, 이용률과 잔여 이용 가능 물량을 운영당국이 지정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에 시의적절하게 공표한다.

5. 각 당사국은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운영을 적용하기 이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한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당사국의 관세율할당 운영에 관하여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상품무역위원회의 차기 회의에서 협의한다. 협의 시 양 당사국은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한다.

버터 및 우유 추출 기타 유지방

6.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호주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메트릭톤)
1	113
2	115
3	118
4	120
5	122
6	125
7	127
8	130
9	132
10	135
11	138
12	141
13	143
14	146
15	무제한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의 제3항아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15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0405100000 및 0405900000

치즈(신선, 갈았거나 분상인 것, 가공한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종류)

7.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호주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메트릭톤)
1	4,630
2	4,769
3	4,912
4	5,059
5	5,211
6	5,367
7	5,528
8	5,694
9	5,865
10	6,041
11	6,222
12	6,409
13	4,443
14	4,576
15	4,714
16	4,855
17	5,001
18	383
19	394
20	무제한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에 따라 철폐된다.

1) HSK 세번 0406901000은 부속서 2-가의 제3항사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13

2) HSK 세번 0406101010, 0406101020, 0406101090 및 0406300000은 부속서 2-가의 제3항차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18, 그리고

3) HSK 세번 0406200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및 0406909000은 부속서 2-가의 제3항카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20

다. 가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1) 이행 1년차부터 이행 12년차까지는 0406101010, 0406101020, 0406101090, 0406200000, 0406300000, 0406901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및 0406909000

2) 이행 13년차부터 이행 17년차까지는 0406101010, 0406101020, 0406101090, 0406200000, 0406300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및 0406909000, 그리고

3) 이행 18년차부터 이행 19년차까지는 0406200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및 0406909000

오렌지

8.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호주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메트릭톤)
1	20
2	20
3	20
4	20
5	20
6	20
7	30
8	30
9	30
10	30
이행 10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이행 10년차의 물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의 제3항하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S-2에 따라 취급된다.

다. 가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0805100000

맥아 및 맥주맥

9.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호주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메트릭톤)
1	10,000
2	10,200
3	10,404
4	10,612
5	10,824
6	11,041
7	11,262
8	11,487
9	11,717
10	11,951
11	12,190
12	12,434
13	12,682
14	12,936
15	무제한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의 제3항아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15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1003001000 및 1107100000

식용대두(IP)

10.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라호에 기술된 호주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메트릭톤)
1	500
2	550
3	600
4	650
5	700
6	750
7	800
8	850
9	900
10	950
11	1,000
이행 11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이행 11년차의 물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나. IP 대두란 95 퍼센트 이상의 단일종 대두를 포함하고 이물질은 1 퍼센트 이하인 한 선적분의 대두를 말한다. IP 대두는 벌크 선적될 수 없으며 포대나 컨테이너로 선적된다.

다.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의 제3항러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E에 따라 취급된다.

라. 가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1201009010 및 1201009090

사료용식물(기타)

11.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호주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메트릭톤)
1-14	연간 50,000
15	무제한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의 제3항아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15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1214909090

조제분유 및 기타

12.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호주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메트릭톤)
1	470
2	484
3	499
4	514
5	529
6	545
7	561
8	578
9	595
10	613
11	632
12	651
13	35
14	36
15	무제한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에 따라 철폐된다.

1) HSK 세번 1901101010은 부속서 2-가의 제3항사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13, 그리고

2) HSK 세번 1901101090은 부속서 2-가의 제3항아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15

다. 가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1) 이행 1년차부터 이행 12년차까지는 1901101010 및 1901101090, 그리고

2) 이행 13 년차부터 이행 14 년차까지는 1901101090

한-호주 FTA 협정 한국 양허표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101101000	말(농가 교배용의 것에 한한다)	0	0	
0101109000	기타	8	10	
0101901010	경주말	8	5	
0101901090	기타	8	10	
0101909000	기타	8	10	
0102101000	젖소	89.1	5	
0102102000	육우	89.1	5	
0102109000	기타	89.1	0	
0102901000	젖소	40	E	
0102902000	육우	40	E	
0102909000	기타	0	0	
0103100000	순종 교배용 동물	18	0	
0103910000	중량이 50 킬로그램 미만인 것	18	5	
0103920000	중량이 50 킬로그램 이상인 것	18	3	
0104101000	순종 교배용 동물	0	0	
0104109000	기타	8	15	
0104201000	유용산양	8	10	
0104209000	기타	8	0	
0105111000	순종 교배용 동물	9	15	
0105119000	기타	9	5	
0105120000	칠면조	9	0	
0105191010	순종 교배용 동물	0	0	
0105191090	기타	18	0	
0105199000	기타	9	0	
0105941000	순종 교배용 동물	9	0	
0105949000	기타	9	0	
0105991010	순종 교배용 동물	0	0	
0105991090	기타	18	3	
0105992000	칠면조	9	3	
0105999000	기타	9	3	
0106110000	영장류	8	0	
0106120000	고래 ·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 및 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8	3	
0106191000	개	8	5	
0106192010	순종 교배용 동물	0	0	
0106192090	기타	8	0	
0106193000	사슴	8	10	
0106194000	곰	8	3	
0106195010	순종 교배용 동물	0	0	
010619509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106196010	순종 교배용 동물	0	0	
0106196090	기타	8	3	
0106199000	기타	8	7	
0106201000	뱀	8	3	
0106202000	자라	8	3	
0106203000	거북	8	0	
0106209000	기타	8	5	
0106310000	맹금류	8	7	
0106320000	앵무류(패로트류, 파라키트류, 금강앵무류 및 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8	7	
0106390000	기타	8	0	
0106901000	양서류	8	0	
0106902010	꿀벌	8	10	
0106902090	기타	8	0	
0106903010	갯지렁이	8	0	
0106903020	실지렁이	8	0	
0106903090	기타	8	0	
0106909000	기타	8	0	
0201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40	15	부속서 6-가 참조
0201201000	갈비	40	15	부속서 6-가 참조
0201209000	기타	40	15	부속서 6-가 참조
0201300000	뼈 없는 것	40	15	부속서 6-가 참조
0202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40	15	부속서 6-가 참조
0202201000	갈비	40	15	부속서 6-가 참조
0202209000	기타	40	15	부속서 6-가 참조
0202300000	뼈 없는 것	40	15	부속서 6-가 참조
02031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2.5	5	
0203120000	넓적다리살,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2.5	5	
0203191000	삼겹살	22.5	10	
0203199000	기타	22.5	15	
02032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5	E	
0203220000	넓적다리살,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5	E	
0203291000	삼겹살	25	E	
0203299000	기타	25	5	
0204100000	어린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2.5	10	
02042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2.5	10	
0204220000	기타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2.5	10	
0204230000	뼈 없는 것	22.5	10	
020430000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 것에 한한다)	22.5	10	
02044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2.5	10	
0204420000	기타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2.5	10	
0204430000	뼈 없는 것	22.5	10	
0204501000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2.5	10	
0204502000	냉동한 것	22.5	10	
0205001000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7	15	
0205002000	냉동한 것	27	15	
0206100000	소의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8	15	
0206210000	혀	18	15	
0206220000	간	18	15	
0206291000	꼬리	18	15	
0206292000	족	18	15	
0206299000	기타	18	15	
0206300000	돼지의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8	7	
0206410000	간	18	5	
0206491000	족	18	7	
0206499000	기타	18	5	
0206800000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8	15	
0206900000	기타(냉동한 것에 한한다)	18	15	
0207111000	중량이 550 그램 이하인 것	18	18	
0207119000	기타	18	18	
0207121000	중량이 550 그램 이하인 것	20	18	
0207129000	기타	20	18	
0207131010	다리	18	18	
0207131020	가슴	18	18	
0207131030	날개	18	18	
0207131090	기타	18	18	
0207132010	간	22.5	18	
0207132090	기타	27	18	
0207141010	다리	20	E	
0207141020	가슴	20	18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207141030	날개	20	18	
0207141090	기타	20	18	
0207142010	간	22.5	18	
0207142090	기타	27	18	
0207240000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8	10	
0207250000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18	10	
0207261000	절단육	18	10	
0207262010	간	22.5	15	
0207262090	기타	27	15	
0207271000	절단육	18	18	
0207272010	간	22.5	10	
0207272090	기타	27	15	
0207320000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8	15	
0207330000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18	18	
0207340000	지방간(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2.5	15	
0207351000	절단육	18	15	
0207352010	간	22.5	15	
0207352090	기타	27	15	
0207361000	절단육	18	18	
0207362010	간	22.5	15	
0207362090	기타	27	15	
0208100000	토끼의 것	22.5	15	
0208300000	영장류의 것	18	7	
0208400000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 및 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30	3	
0208500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18	0	
0208901000	사슴의 것	27	10	
0208909010	해양동물의 것	30	0	
0208909090	기타	18	15	
0209001000	돼지 비계	3	0	
0209002000	가금의 비계	3	0	
0210110000	넓적다리살,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5	5	
0210120000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30	5	
0210190000	기타	25	5	
0210201000	건조 또는 훈제한 것	27	15	
0210209000	기타	27	15	
0210910000	영장류의 것	22.5	10	
0210920000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 및 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22.5	10	
0210930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22.5	10	
0210991010	소의 것	22.5	15	
0210991020	돼지의 것	22.5	5	
0210991030	가금류의 것	22.5	10	
0210991090	기타	22.5	10	
0210999010	면양 또는 산양의 것	22.5	10	
0210999020	가금류의 것	22.5	10	
0210999090	기타	22.5	10	
0301101000	비단잉어	10	5	
0301102000	옅대어	10	7	
0301109000	기타	10	3	
0301911000	살모 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앙코링쿠스 클라키,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10	3	
0301912000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10	3	
0301921000	실뱀장어(양식용에 한한다)	0	0	
0301929000	기타	27 퍼센트 또는 1,879 원/kg, 양자중 고액(율)	E	
0301930000	잉어	10	0	
0301940000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10	3	
0301950000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멕코이)	10	5	
0301992000	방어	10	0	
0301994010	치어(양식용에 한한다)	0	0	
0301994090	기타	31 퍼센트 또는 2,272 원/kg, 양자중 고액(율)	5	
0301995000	붕장어	10	7	
0301996000	갯장어	10	0	
0301997000	먹장어	10	0	
0301998000	넙치류	10	3	
0301999010	능성어	10	3	
0301999020	복어	10	0	
0301999030	틸라피아	10	0	
0301999040	볼락(적어를 포함한다)	10	3	
0301999051	치어(양식용에 한한다)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301999059	기타	31	7	
0301999060	숭어	10	0	
0301999070	미꾸라지	10	0	
0301999080	메기	10	0	
0301999091	노래미(헥사그라모스종, 아그라무스종)	10	0	
0301999092	붕어	10	0	
0301999093	연어	10	5	
0301999094	초어	10	0	
0301999095	민어	31	10	
0301999099	기타	10	10	
0302111000	살모 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앙코링쿠스 클라키,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20	10	
0302112000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20	10	
0302120000	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넬카,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앙코링쿠스 케타, 앙코링쿠스 챠비챠, 앙코링쿠스 키수츠, 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20	0	
0302190000	기타	20	10	
0302210000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20	3	
0302220000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	20	7	
0302230000	서대(솔레아종)	20	10	
0302290000	기타	20	3	
0302310000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	20	7	
03023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20	5	
0302330000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	20	10	
03023400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20	3	
0302350000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20	5	
0302360000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멕코이)	20	0	
0302390000	기타	20	3	
030240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클루페아 팔라시)(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20	0	
030250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 가두스 오각,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20	10	
0302610000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 사르디노프스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 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20	5	
030262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2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3026300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20	3	
0302640000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 스콤버 자포니쿠스)	20	3	
0302650000	곱상어와 기타 상어	20	3	
0302660000	뱀장어(앵귈라종)	20	10	
030267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20	7	
030268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20	5	
0302691000	명태	20	10	
0302692000	방어	20	0	
0302693000	갈치	20	10	
0302694000	돔	20	7	
0302695000	붕장어	20	7	
0302696000	갯장어	20	0	
0302697000	전갱이	20	10	
0302698000	꽁치(학꽁치를 포함한다)	20	0	
0302699010	삼치	20	5	
0302699020	복어	20	0	
0302699030	병어	20	0	
0302699040	아귀	20	10	
0302699090	기타	20	7	
0302701000	간	20	0	
0302702000	어란	20	0	
0303110000	소크아이 연어(홍연어)(앙코링쿠스 넬카)	10	0	
0303190000	기타	10	10	
0303210000	송어(살모 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앙코링쿠스 클라키,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10	15	
0303220000	대서양연어(살모 살라)와 다뉴브연어(후코 후코)	10	0	
0303290000	기타	10	10	
0303310000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10	15	
0303320000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	10	12	
0303330000	서대(솔레아종)	10	10	
0303390000	기타	10	15	
0303410000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	10	10	
03034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10	15	
0303430000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	10	12	
03034400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10	1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303450000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10	15	
0303460000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10	3	
0303490000	기타	10	10	
030351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클루페아 팔라시)	10	0	
030352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 가두스 오각,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10	10	
030361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10	12	
030362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10	5	
0303710000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 사르디노프스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 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10	7	
030372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10	0	
03037300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10	12	
0303740000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 스콤버 자포니쿠스)	10	15	
0303750000	곱상어와 기타 상어	10	10	
0303760000	뱀장어(앵귈라종)	10	10	
0303770000	농어(디센트라쿠스 라브락스, 디센트라쿠스 퓬크타투스)	10	0	
0303780000	민대구(메루키우스종, 유르피키스종)	10	15	
0303791000	명태	30	E	
0303792000	은대구	10	15	
0303793000	갈치	10	12	
0303794010	옥돔(브랜치오스테거스 자포니커스)	10	12	
0303794090	기타	10	15	
0303795000	붕장어	10	10	
0303796000	조기	10	15	
0303797000	전갱이	10	10	
0303798000	꽁치(학꽁치를 포함한다)	31	10	
0303799010	삼치	10	10	
0303799020	복어	10	7	
0303799030	보리멸	10	0	
0303799040	홍살치	10	0	
0303799050	달고기	10	0	
0303799060	임연수어	10	0	
0303799070	볼락(적어를 포함한다)	10	12	
0303799080	새꼬리 민태	10	5	
0303799091	아귀	10	12	
0303799092	먹장어(대서양, 태평양)	10	10	
0303799093	홍어	10	12	
0303799094	밀크피쉬	10	0	
0303799095	민어	50	15	
0303799096	가오리	10	10	
0303799097	까나리	10	10	
0303799098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은 제외한다)	10	12	
0303799099	기타	10	12	
0303801000	간	10	0	
0303802010	명란	10	10	
0303802090	기타	10	10	
0304111000	피레트	20	3	
0304112000	연육	20	3	
0304119000	기타	20	3	
0304121000	피레트	20	7	
0304122000	연육	20	7	
0304129000	기타	20	5	
0304191010	피레트	20	5	
0304191020	연육	20	5	
0304191090	기타	20	5	
0304192010	피레트	20	0	
0304192020	연육	20	0	
0304192090	기타	20	0	
0304193010	피레트	20	5	
0304193020	연육	20	5	
0304193090	기타	20	5	
0304199010	피레트	20	5	
0304199020	연육	20	5	
0304199090	기타	20	5	
030421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10	10	
030422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10	12	
0304291000	명태의 것	10	10	
0304292000	붕장어의 것	10	7	
0304293000	대구의 것	10	15	
0304294000	가자미의 것	10	15	
0304295000	참다랑어의 것	10	15	
0304296000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은 제외한다)의 것	10	12	
0304297000	틸라피아의 것	10	0	
0304298000	쥐치의 것	10	0	
0304299000	기타	10	3	
0304911000	냉동 연육	10	10	
0304919000	기타	10	10	
0304921000	냉동 연육	10	10	
0304929000	기타	10	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304991010	냉동연육	10	10	
0304991090	기타	10	5	
0304999010	냉동연육	10	5	
0304999090	기타	10	3	
0305100000	어류의 분, 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20	0	
0305201000	간	20	0	
0305202000	건조어란	20	3	
0305203000	훈제어란	20	3	
0305204010	명태의 것	20	10	
0305204020	조기의 것	20	3	
0305204030	청어의 것	20	0	
0305204090	기타	20	7	
0305301000	건조한 것	20	3	
0305302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0	3	
0305410000	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넬카,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앙코링쿠스 케타, 앙코링쿠스 챠비챠, 앙코링쿠스 키수츠, 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20	0	
030542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클루페아 팔라시)	20	0	
0305491000	멸치	20	3	
0305492000	명태	20	5	
0305499000	기타	20	3	
030551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 가두스 오각,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20	5	
0305591000	상어 지느러미	20	10	
0305592000	멸치	20	12	
0305593000	명태(북어)	20	5	
0305594000	조기(굴비)	20	10	
0305595000	북어	20	0	
0305596000	갯장어	20	0	
0305597000	까나리	20	3	
0305598000	베도라치(실치를 포함한다)	20	0	
0305599000	기타	20	3	
030561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클루페아 팔라시)	20	0	
030562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 가두스 오각,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20	3	
0305631000	멸치젓	20	12	
0305639000	기타	20	7	
0305691000	연어	20	7	
0305692000	송어	20	10	
0305693000	갈치	20	3	
0305694000	정어리	20	3	
0305695000	고등어	20	10	
0305696000	조기	20	3	
0305697000	전갱이	20	0	
0305698000	꽁치(학꽁치를 포함한다)	20	0	
0305699000	기타	20	3	
0306110000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 파누리루스종, 자수스종)	20	3	
0306120000	바닷가재(호마루스종)	20	5	
0306131000	새우살	20	5	
0306139000	기타	20	10	
0306141000	게살	20	12	
0306142000	왕게	20	5	
0306143000	꽃게	14	15	
0306149000	기타	14	12	
0306190000	기타[분, 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20	15	
0306210000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 파누리루스종, 자수스종)	20	3	
0306220000	바닷가재(호마루스종)	20	7	
0306231000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7	
0306232000	건조한 것	20	7	
0306233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42 퍼센트 또는 283 원/kg, 양자중 고액(율)	7	
0306241010	꽃게	20	7	
0306241020	대게	20	12	
0306241090	기타	20	7	
0306242000	건조한 것	20	5	
0306243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0	3	
0306291000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7	
0306292000	건조한 것	20	10	
0306293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0	5	
0307101011	종패용	0	0	
0307101019	기타	5	0	
0307101090	기타	20	7	
0307102000	냉동한 것	20	E	
0307103000	건조한 것	20	12	
0307104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0	3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307210000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10	
0307291000	냉동한 것	20	10	
0307292000	건조한 것	20	3	
0307293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0	3	
0307310000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7	
0307391000	냉동한 것	20	12	
0307392000	건조한 것	20	10	
0307399000	기타	20	3	
0307411000	갑오징어	10	3	
0307412000	오징어	10	5	
0307491010	갑오징어	10	5	
0307491020	오징어	22	15	
0307492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10	10	
0307493000	건조한 것	10	7	
0307511000	낙지	20	7	
0307512000	주꾸미	20	7	
0307519000	기타	20	7	
0307591010	문어	20	7	
0307591020	낙지	20	10	
0307591030	주꾸미	20	10	
0307591090	기타	20	3	
0307592000	건조한 것	20	10	
0307599000	기타	20	7	
0307600000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20	0	
0307911110	치패	20	0	
0307911190	기타	20	0	
0307911200	전복	20	E	
0307911300	소라	20	0	
0307911410	종패용	0	0	
0307911490	기타	20	0	
0307911510	종패용	0	0	
0307911590	기타	20	3	
0307911600	새조개	20	0	
0307911700	개아지살	20	3	
0307911800	바지락	20	0	
0307911910	재첩	20	0	
0307911990	기타	20	7	
0307919010	성게	20	5	
0307919020	해삼	20	3	
0307919031	종패용	0	0	
0307919039	기타	20	0	
0307919040	해파리	20	7	
0307919090	기타	20	5	
0307991110	새조개	20	5	
0307991120	개량조개	20	3	
0307991130	바지락	20	5	
0307991140	개아지살	20	3	
0307991150	피조개	20	10	
0307991160	소라(냉동한 것)	20	12	
0307991190	기타	20	10	
0307991910	해삼	20	3	
0307991920	우렁쉥이	20	10	
0307991990	기타	20	5	
0307992110	개량조개	20	3	
0307992120	개아지살	20	3	
0307992130	바지락	20	0	
0307992190	기타	20	10	
0307992920	해삼	20	3	
0307992930	우렁쉥이	20	5	
0307992990	기타	20	5	
0307993110	개량조개	20	3	
0307993120	바지락	20	0	
0307993130	소라(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0	5	
0307993190	기타	20	3	
0307993910	성게	20	5	
0307993920	해삼	20	3	
0307993930	해파리	20	3	
0307993990	기타	20	5	
0401100000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 퍼센트 이하인 것	36	20	
0401200000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 퍼센트 초과 6 퍼센트 이하인 것	36	20	
0401301000	냉동크림	36	13	
0401309000	기타	36	17	
0402101010	탈지분유	176	E	
0402101090	기타	176	E	
0402109000	기타	176	E	
0402211000	전지분유	176	E	
0402219000	기타	176	E	
0402290000	기타	176	E	
0402911000	무당연유	89	E	
0402919000	기타	89	E	
0402991000	가당연유	89	E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406101010	모차렐라 치즈	36	한국 양허표 부록 2 가- 1 의 7 항 참조	
0406101020	크림 치즈	36	한국 양허표 부록 2 가- 1 의 7 항 참조	
0406101090	기타	36	한국 양허표 부록 2 가- 1 의 7 항 참조	
0406102000	커드	36	15	
0406200000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36	한국 양허표 부록 2 가- 1 의 7 항 참조	
0406300000	가공치즈(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36	한국 양허표 부록 2 가- 1 의 7 항 참조	
0406400000	블루바인 치즈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로 생산된 바인을 함유한 기타 치즈	36	15	
0402999000	기타	89	E	
0403101000	액상의 것	36	15	
0403102000	냉동한 것	36	15	
0403109000	기타	36	15	
0403901000	버터밀크	89	E	
0403902000	응고밀크와 응고크림	36	E	
0403903000	케피어	36	E	
0403909000	기타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36	E	
0404101011	사료용	49.5	5	
0404101019	기타	49.5	15	
0404101091	사료용	49.5	5	
0404101099	기타	49.5	15	
0404102111	사료용	49.5	5	
0404102119	기타	49.5	15	
0404102121	사료용	49.5	5	
0404102129	기타	49.5	15	
0404102131	사료용	49.5	5	
0404102139	기타	49.5	15	
0404102191	사료용	49.5	5	
0404102199	기타	49.5	15	
0404102910	사료용	49.5	5	
0404102990	기타	49.5	15	
0404901000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5 퍼센트 이하인 것	36	13	
0404902000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36	15	
0405100000	버터	89	한국 양허표 부록 2 가- 1 의 6 항 참조	
0405200000	데어리 스프레드	8	3	
0405900000	기타	89	한국 양허표 부록 2 가- 1 의 6 항 참조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406901000	체더 치즈	36	한국 양허표 부록 2 가-1 의 7 항 참조	
0406902000	가우더 치즈	36	한국 양허표 부록 2 가-1 의 7 항 참조	
0406903000	카망베르 치즈	36	한국 양허표 부록 2 가-1 의 7 항 참조	
0406904000	에멘탈 치즈	36	한국 양허표 부록 2 가-1 의 7 항 참조	
0406909000	기타	36	한국 양허표 부록 2 가-1 의 7 항 참조	
0407001010	종란	27	18	
0407001090	기타	27	18	
0407009000	기타	27	15	
0408110000	건조한 것	27	15	
0408190000	기타	27	15	
0408910000	건조한 것	27	15	
0408991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에 한한다)의 것	41.6	15	
0408999000	기타	27	15	
0409000000	천연꿀	243 퍼센트 또는 1,864 원/kg, 양자중 고액(율)	E	
0410001000	거북알	8	0	
0410002000	살랑갠 둥우리	8	0	
0410003000	로열젤리	8	E	
0410009000	기타	8	0	
0501000000	인모(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세척 또는 세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그 웨이스트	3	0	
0502100000	돼지털, 멧돼지털 및 그 웨이스트	3	0	
0502902000	염소털	3	0	
0502909000	기타	3	0	
0504001010	소의 것	27	15	
0504001090	기타	27	E	
0504002000	방광	27	10	
0504003000	위	27	15	
0505100000	솜털, 충전재용 깃털	3	5	
0505901000	우모분	5	7	
0505909000	기타	5	7	
0506100000	골소와 뼈(산처리한 것에 한한다)	3	0	
0506901010	호랑이의 것	3	0	
0506901020	소의 것	9	5	
0506901090	기타	3	0	
0506902000	골분	25.6	10	
0506909000	기타	3	0	
0507101000	상아	8	0	
0507102000	서각	8	0	
0507109000	기타	8	7	
0507901110	전지	20	E	
0507901190	기타	20	E	
0507901200	녹각	20	E	
0507902010	귀갑과 귀판	8	5	
0507902020	고래수염과 그 털	8	3	
0507902030	천산갑	8	5	
0507902040	발굽과 발톱	8	5	
0507902090	기타	8	3	
0508001000	산호	8	0	
0508002010	진주패각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601102000	백합의 것	4	0	
0601103000	다리아의 것	8	0	
0601104000	히아신스의 것	8	0	
0601105000	글라디올러스의 것	8	0	
0601106000	아이리스의 것	8	0	
0601107000	후리지아의 것	8	0	
0601108000	수선의 것	8	0	
0601109000	기타	8	0	
0601201000	튜립의 것	8	0	
0601202000	백합의 것	8	0	
0601203000	다리아의 것	8	0	
0601204000	히아신스의 것	8	0	
0601205000	글라디올러스의 것	8	0	
0601206000	치커리와 치커리 뿌리	8	0	
0601207000	아이리스의 것	8	0	
0601208000	후리지아의 것	8	0	
0601209010	수선의 것	8	0	
0601209090	기타	8	0	
0602101000	과수의 것	8	0	
0602109000	기타	8	10	
0602201000	사과나무	18	5	
0602202000	배나무	18	5	
0602203000	복숭아나무	18	5	
0602204000	포도나무	8	5	
0602205000	감나무	8	5	
0602206000	귤나무	18	5	
0602207010	밤나무	8	10	
0602207020	호두나무	8	10	
0602207030	잣나무	8	10	
0602209000	기타	8	10	
0602300000	진달래 속의 식물 및 철쭉(접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10	
0602400000	장미(접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0602901010	난초	8	10	
0602901020	카네이션	8	3	
0602901030	구즈마니아	8	3	
0602901040	안개초	8	3	
0602901050	국화	8	3	
0602901060	선인장류	8	3	
0602901090	기타	8	3	
0602902011	분재용	8	1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508002020	청패각(전복)	8	0	
0508002030	첩패각과 지첩패각	8	0	
0508002040	야광패각(소라)	8	0	
0508002050	트로커스패각	8	0	
0508002060	아고야패각	8	0	
0508002070	민물패각(메가로나이아스네보사, 앰브레마프리카타, 쾌드루라 쾌드루라종)	8	0	
0508002090	기타	8	0	
0508009000	기타	8	0	
0510001000	용연향	8	3	
0510002000	해리향	8	3	
0510003000	사향	8	15	
0510004000	우황	8	0	
0510005000	오령지	8	0	
0510009010	췌장	8	3	
0510009020	담즙	8	3	
0510009030	합개	8	0	
0510009090	기타	8	0	
0511100000	소의 정액	0	0	
0511911010	브라인 슈림프알	8	0	
0511911090	기타	8	0	
0511912000	어류의 웨이스트	5	0	
0511919000	기타	8	3	
0511991000	동물의 피	8	7	
0511992010	돼지의 정액	0	0	
0511992090	기타	0	0	
0511993010	소의 것	18	15	
0511993020	돼지의 것	18	15	
0511993090	기타	0	0	
0511994000	동물의 건(腱)과 근(筋)	18	15	
0511995011	정돈한 것	3	0	
0511995019	기타	3	0	
0511995020	마모의 웨이스트	3	0	
0511996000	동물성의 천연해면	8	0	
0511999010	잠종	18	0	
0511999020	누에번데기	8	0	
0511999030	동물의 사체(제 3 류 동물의 사체의 물품은 제외한다)	8	0	
0511999040	원피의 페어링 및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	8	0	
0511999090	기타	8	0	
0601101000	튜립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703101000	양파	135 퍼센트 또는 180 원/kg, 양자중 고액(율)	E	
0703102000	쪽파	27	E	
0703201000	탈피한 것	360 퍼센트 또는 1,800 원/kg, 양자중 고액(율)	E	
0703209000	기타	360 퍼센트 또는 1,800 원/kg, 양자중 고액(율)	E	
0703901000	리크	27	7	
0703909000	기타	27	15	
0704100000	꽃양배추 및 결구된 브로콜리	27	10	
0704200000	방울다다기 양배추	27	7	
0704901000	양배추	27	7	
0704902000	배추	27	5	
0704909000	기타	27	5	
0705110000	결구상추	45	18	
0705190000	기타	45	18	
0705210000	위트루우프치커리(시코리엄 인티버스변종, 포리오섬)	8	3	
0705290000	기타	8	3	
0706101000	당근	30 퍼센트 또는 134 원/kg, 양자중 고액(율)	5	
0706102000	순무	27	10	
0706901000	무	30	15	
0706902000	고추냉이와 겨자무	27	10	
0706903000	더덕	27	E	
0706904000	도라지	27	E	
0706909000	기타	27	15	
0707000000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7	15	
0708100000	완두(피섬 새티범)	27	7	
0708200000	콩(비그나종, 파세러스종)	27	1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602902019	기타	8	10	
0602902020	낙엽송	8	10	
0602902030	삼나무	8	10	
0602902040	편백	8	10	
0602902050	리기테다	8	10	
0602902061	분재용	8	10	
0602902069	기타	8	10	
0602902071	분재용	8	10	
0602902079	기타	8	10	
0602902081	분재용	8	10	
0602902089	기타	8	10	
0602902091	분재용	8	10	
0602902099	기타	8	10	
0602909010	목단	8	10	
0602909020	동백	8	10	
0602909030	뽕나무	18	10	
0602909040	버섯의 종균	8	5	
0602909090	기타	8	10	
0603110000	장미	25	18	
0603120000	카네이션	25	18	
0603131000	심비디움	25	10	
0603132000	팔레놉시스	25	15	
0603139000	기타	25	15	
0603140000	국화	25	15	
0603191000	튜립	25	15	
0603192000	글라디올러스	25	18	
0603193000	백합	25	18	
0603194000	안개초	25	E	
0603199000	기타	25	18	
0603900000	기타	25	10	
0604100000	이끼와 지의	8	10	
0604911010	은행잎	8	10	
0604911090	기타	8	10	
0604919000	기타	8	5	
0604990000	기타	8	5	
0701100000	종자용	304	10	
0701900000	기타	304	E/S-1 [1]	
0702000000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45	7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710804000	당근	27	10	
0710805000	고사리	30	15	
0710806000	송이버섯	27	18	
0710807000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27	E	
0710809000	기타	27	15	
0710900000	채소류의 혼합물	27	18	
0711200000	올리브	27	18	
0711400000	오이류	30	15	
0711510000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30	15	
0711591000	송로	27	15	
0711599000	기타	30	15	
0711901000	마늘	360 퍼센트 또는 1,800 원/kg, 양자중 고액(을)	E	
0711903000	죽순	27	15	
0711904000	당근	30	15	
0711905010	고사리	30	15	
0711905020	고비	27	15	
0711905091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270 퍼센트 또는 6,210 원/kg, 양자중 고액(을)	E	
0711905099	기타	27	15	
0711909000	채소류의 혼합물	27	7	
0712200000	양파	135 퍼센트 또는 180 원/kg, 양자중 고액(율)	E	
0712311000	양송이 버섯	30	18	
0712319000	기타	30 퍼센트 또는 1,218 원/kg, 양자중 고액(율)	18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708900000	기타 채두류	27	5	
0709200000	아스파라거스	27	3	
0709300000	가지(에그플랜트)	27	5	
0709400000	셀러리(셀러리악은 제외한다)	27	5	
0709517000	양송이 버섯	30	15	
0709519000	기타	30	15	
0709591000	송이버섯	30	15	
0709592000	표고버섯	40 퍼센트 또는 1,625 원/kg, 양자중 고액(을)	E	
0709593000	영지버섯	30	18	
0709594010	큰느타리버섯	30	18	
0709594090	기타	30	18	
0709595000	팽이버섯	30	18	
0709596000	송로	27	15	
0709599000	기타	30	18	
0709601000	단고추(벨타입에 한한다)	270 퍼센트 또는 6,210 원/kg, 양자중 고액(을)	E	
0709609000	기타	270 퍼센트 또는 6,210 원/kg, 양자중 고액(을)	E	
0709700000	시금치류	27	7	
0709901000	고사리	30	15	
0709902000	고비	27	15	
0709903000	호박	27	15	
0709909000	기타	27	15	
0710100000	감자	27	15	
0710210000	완두(피섬 새티범)	27	15	
0710220000	콩(비그나종, 파세러스종)	27	15	
0710290000	기타	27	15	
0710300000	시금치류	27	15	
0710400000	스위트콘	30	15	
0710801000	양파	27	15	
0710802000	마늘	27	18	
0710803000	죽순	27	1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712902030	파	30 퍼센트 또는 1,159 원/kg, 양자중 고액(율)	E	
0712902040	당근	30 퍼센트 또는 864 원/kg, 양자중 고액(율)	18	
0712902050	호박	30	15	
0712902060	양배추	30	15	
0712902070	토란줄기	30	15	
0712902080	고구마줄기	30	15	
0712902091	스위트콘(종자용)	370	15	
0712902092	스위트콘(종자용은 제외한다)	370	15	
0712902093	감자	27	7	
0712902094	고비	30 퍼센트 또는 1,446 원/kg, 양자중 고액(율)	15	
0712902095	더덕	30	E	
0712902099	기타	30	15	
0712909000	채소류의 혼합물	27	7	
0713101000	종자용	27	5	
0713102000	사료용	0	0	
0713109000	기타	27	10	
0713200000	이집트 콩(가반조스)	27	10	
0713311000	종자용	607.5	5	
0713319000	기타	607.5	B	
0713321000	종자용	420.8	15	
0713329000	기타	420.8	15	
0713331000	종자용	27	5	
0713339000	기타	27	10	
0713390000	기타	27	7	
0713400000	렌즈콩	27	10	
0713500000	잠두(비시아 파바변종, 메이저) 및 말먹이용의 잠두(비시아 파바변종, 에퀴나 비시아 파바변종, 마이너)	27	5	
0713900000	기타	27	5	
0714101000	신선한 것	887.4	1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712320000	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종)	30 퍼센트 또는 1,218 원/kg, 양자중 고액(율)	15	
0712330000	젤리균류(트레멜라종)	30 퍼센트 또는 1,218 원/kg, 양자중 고액(율)	18	
0712391010	송이버섯	30	15	
0712391020	표고버섯	40 퍼센트 또는 1,625 원/kg, 양자중 고액(율)	E	
0712391030	영지버섯	30 퍼센트 또는 842 원/kg, 양자중 고액(율)	18	
0712391040	느타리버섯	30	18	
0712391050	팽이버섯	30	18	
0712391090	기타	30 퍼센트 또는 1,218 원/kg, 양자중 고액(율)	18	
0712392000	송로	27	15	
0712901000	마늘	360 퍼센트 또는 1,800 원/kg, 양자중 고액(율)	E	
0712902010	고사리	30 퍼센트 또는 1,807 원/kg, 양자중 고액(율)	15	
0712902020	무	30	1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714102010	칩	887.4	15	
0714102020	펠리트	887.4	15	
0714102090	기타	887.4	15	
0714103000	냉장한 것	887.4	15	
0714104000	냉동한 것	45	15	
0714201000	신선한 것	385 퍼센트 또는 338 원/kg, 양자중 고액(율)	18	
0714202000	건조한 것	385	15	
0714203000	냉장한 것	385	15	
0714204000	냉동한 것	45	15	
0714209000	기타	385	18	
0714901010	냉동한 것	45	18	
0714901090	기타	18	15	
0714909010	냉동한 것	45	10	
0714909090	기타	385	E	
0801110000	말린 것	30	15	
0801190000	기타	30	15	
08012100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30	15	
0801220000	탈각한 것	30	15	
08013100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8	15	
0801320000	탈각한 것	8	15	
08021100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8	10	
0802120000	탈각한 것	8	0	
08022100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8	10	
0802220000	탈각한 것	8	10	
08023100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45	E	
0802320000	탈각한 것	30	E	
08024010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219.4 퍼센트 또는 1,470 원/kg, 양자중 고액(율)	E	
0802402000	탈각한 것	219.4 퍼센트 또는 1,470 원/kg, 양자중 고액	E	
0802500000	피스타치오	30	18	
0802600000	마카다미아 너트	30	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802901010	탈각하지 아니한 것	566.8 퍼센트 또는 2,664 원/kg, 양자중 고액(율)	15	
0802901020	탈각한 것	566.8 퍼센트 또는 2,664 원/kg, 양자중 고액(율)	15	
0802902010	탈각하지 아니한 것	27.0 퍼센트 또는 803 원/kg, 양자중 고액(율)	10	
0802902020	탈각한 것	27.0 퍼센트 또는 803 원/kg, 양자중 고액(율)	10	
0802909000	기타	30	7	
0803000000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30	15	
0804100000	대추야자	30	15	
0804200000	무화과	30	15	
0804300000	파인애플	30	15	
0804400000	아보카도	30	15	
0804501000	구아버	30	10	
0804502000	망고	30	10	
0804503000	망고스틴	30	15	
0805100000	오렌지	50	한국양허표 부록 2 가-1 의 8 항 참조	
0805201000	감귤	144	E	
0805209000	기타	144	S-3	
0805400000	그레이프프루트(포멜로우를 포함한다)	30	15	
0805501000	레몬(시트러스 리몬, 시트러스 리머늄)	30	18	
0805502010	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	30	1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805502020	시트러스 라티폴리아	144	15	
0805900000	기타	144	E	
0806100000	신선한 것	45	S-4	
0806200000	건조한 것	21	0	
0807110000	수박	45	E	
0807190000	기타	45	18	
0807200000	포포우(파파야)	30	15	
0808100000	사과	45	E	
0808201000	배	45	E	
0808202000	마르멜로	45	18	
0809100000	살구	45	7	
0809200000	버찌	24	0	
0809300000	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45	10	
0809401000	자두	45	10	
0809402000	슬로우	45	15	
0810100000	초본류 딸기	45	E	
081020000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및 로간베리	45	15	
0810400000	크랜베리, 빌베리와 기타 박시니엄속의 과실	45	E	
0810500000	키위프루트	45	S-5	
0810600000	두리언	45	15	
0810901000	감	50	E	
0810902000	단감	45	E	
0810903000	대추	611.5 퍼센트 또는 5,800 원/kg, 양자중 고액(율)	E	
0810905000	매실	50	E	
0810909000	기타	45	E	
0811100000	초본류 딸기	30	E	
081120000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 흑색·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 및 구즈베리	30	15	
0811901000	밤	30	18	
0811902000	대추	30	15	
0811903000	잣	30	15	
0811909000	기타	30	7	
0812100000	버찌	30	15	
0812901000	초본류 딸기	30	15	
0812909000	기타	30	15	
0813100000	살구	45	18	
0813200000	프룬	18	18	
0813300000	사과	45	E	
0813401000	감	50	E	
0813402000	대추	611.5 퍼센트 또는 5,800 원/kg, 양자중 고액(율)	E	
0813409000	기타	45	18	
0813500000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45	E	
0814001000	감귤류의 껍질	30	15	
0814002000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	30	15	
09011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2	0	
09011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2	0	
09012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8	7	
09012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8	7	
0901901000	커피의 각과 피	3	3	
0901902000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8	7	
0902100000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내용물의 무게가 3 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에 한한다)	513.6	E	
0902200000	기타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13.6	E	
0902300000	홍차(발효차)와 부분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 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에 한한다)	40	18	
0902400000	기타 홍차(발효차)와 기타 부분발효차	40	18	
0903000000	마태	25	7	
0904110000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8	10	
0904120000	파쇄 또는 분쇄한 것	8	10	
0904201000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270 퍼센트 또는 6,210 원/kg, 양자중 고액(율)	E	
0904202000	파쇄 또는 분쇄한 것	270 퍼센트 또는 6,210 원/kg, 양자중 고액(율)	E	
0905000000	바닐라	8	15	
0906110000	계피(신나모멈 제이라니쿰 블룸)	8	10	
0906191000	계피(신나모멈 제이라니쿰 블룸은 제외한다)	8	1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1003001000	맥주맥	513	한국양허표 부록 2 가-1 의 9 항 참조	부속서 6-가 참조
1003009010	겉보리	324 퍼센트 또는 326 원/kg, 양자중 고액(율)	E	
1003009020	쌀보리	299.7 퍼센트 또는 361 원/kg, 양자중 고액(율)	E	
1003009090	기타	299.7	E	
1004001000	종자용	554.8	5	
1004009000	기타	3	0	
1005100000	종자용	328	18	
1005901000	사료용	328	18	
1005902000	팝콘	630	18	
1005909000	기타	328	7	부속서 6-가 참조
1006100000	벼	-	R	
1006201000	메현미	-	R	
1006202000	찰현미	-	R	
1006301000	멥쌀	-	R	
1006302000	찹쌀	-	R	
1006400000	쇄미	-	R	
1007001000	종자용	779.4	E	
1007009000	기타	3	3	
1008100000	메밀	256.1	E	
1008201010	종자용	18	10	
1008201090	기타	3	10	
1008209000	기타	3	5	
1008300000	카나리시드	3	0	
1008900000	기타 곡물	800.3	E	
1101001000	밀가루	4.2	5	
1101002000	메슬린 가루	5	0	
1102100000	호밀가루	5	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906192000	계피나무의 꽃	8	10	
0906201000	계피	8	10	
0906202000	계피나무의 꽃	8	10	
0907000000	정향[과실, 꽃 및 화경(花莖)에 한한다]	8	10	
0908100000	육두구	8	10	
0908200000	메이스	8	7	
0908300000	소두구	8	3	
0909100000	아니스 또는 대회향의 씨	8	7	
0909200000	코리앤더의 씨	8	15	
0909300000	커민의 씨	8	15	
0909400000	캐러웨이의 씨	8	7	
0909500000	회향의 씨, 쥬니퍼의 열매	8	7	
0910101000	신선 또는 냉장한 것	377.3 퍼센트 또는 931 원/kg, 양자중 고액(율)	E	
0910102000	건조한 것	377.3 퍼센트 또는 931 원/kg, 양자중 고액(율)	E	
0910109000	기타	377.3 퍼센트 또는 931 원/kg, 양자중 고액(율)	E	
0910200000	샤프란	8	10	
0910300000	심황(강황)	8	7	
0910910000	혼합물(이 류의 주 제 1 호나목의 것에 한한다)	8	5	
0910991000	타임, 월계수의 잎	8	5	
0910992000	카레	8	5	
0910999000	기타	8	5	
1001100000	듀럼종의 밀	3	0	
1001901000	메슬린	3	0	
1001909010	종자용	1.8	3	
1001909020	사료용	0	0	
1001909030	제분용	1.8	0	
1001909090	기타	1.8	0	
1002001000	종자용	108.7	15	
1002009000	기타	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1102200000	옥수수가루	5	5	
1102901000	보리가루	260	E	
1102902000	쌀가루	-	R	
1102909000	기타	800.3	E	
1103110000	밀의 것	288.2	E	
1103130000	옥수수의 것	162.9	E	
1103191000	보리의 것	260	E	
1103192000	귀리의 것	554.8	E	
1103193000	쌀의 것	-	R	
1103199000	기타	800.3	15	
1103201000	밀의 것	288.2	15	
1103202000	쌀의 것	-	R	
1103203000	보리의 것	260	15	
1103209000	기타	800.3	E	
1104120000	귀리의 것	554.8	E	
1104191000	쌀의 것	-	R	
1104192000	보리의 것	233	E	
1104199000	기타	800.3	E	
1104220000	귀리의 것	554.8	E	
1104230000	옥수수의 것	167	10	
1104291000	율무의 것	800.3	E	
1104292000	보리의 것	126	E	
1104299000	기타	800.3	E	
1104301000	쌀의 것	5	E	
1104309000	기타	5	7	
1105100000	분, 조분과 분말	304	E	
1105200000	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	304	E	
1106100000	건조한 채두류의 것(제 0713 호의 것에 한한다)	8	7	
1106201000	칡뿌리의 것	8	10	
1106209000	기타	8	10	
1106300000	제 8 류 물품의 것	8	7	
1107100000	볶지 아니한 것	269	한국양허표 부록 2 가-1 의 9 항 참조	부속서 6-가 참조
1107201000	훈연한 것	269	B	
1107209000	기타	27	15	
1108110000	밀의 것	50.9	1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1108121000	식품용	226	B	
1108129000	기타	226	B	
1108130000	감자의 것	455	B	
1108141000	식품용	455	18	
1108149000	기타	455	B	
1108191000	고구마의 것	241.2	B	
1108199000	기타	800.3	B	
1108200000	이눌린	800.3	B	
1109000000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1201001010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487 퍼센트 또는 956 원/kg, 양자중 고액(율)	B	
1201001020	사료용	487 퍼센트 또는 956 원/kg, 양자중 고액(율)	B	
1201009010	콩나물용	487 퍼센트 또는 956 원/kg, 양자중 고액(율)	한국양허표 부록 2 가-1 의 10 항 참조	
1201009090	기타	487 퍼센트 또는 956 원/kg, 양자중 고액(율)	한국양허표 부록 2 가-1 의 10 항 참조	
12021000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230.5	E	
1202200000	탈각한 것(파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30.5	E	
1203000000	코프라	3	0	
1204000000	아마인(파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3	0	
1205101000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0	0	
1205109000	기타	10	0	
1205901000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0	0	
1205909000	기타	10	5	
1206000000	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5	18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1207200000	면실	3	0	
1207400000	참깨	630 퍼센트 또는 6,660 원/kg, 양자중 고액(율)	E	
1207500000	겨자씨	3	0	
1207910000	양귀비씨	3	0	
1207991000	들깨	40 퍼센트 또는 410 원/kg, 양자중 고액(율)	15	
1207992000	시어넛(캐리트넛)	3	0	
1207993000	팜넛과 핵	3	0	
1207994000	피마자	3	0	
1207995000	잇꽃씨	3	0	
1207999000	기타	3	0	
1208100000	대두의 것	3	5	
1208900000	기타	3	0	
1209100000	사탕무 종자	0	0	
1209210000	루우산(알팔파) 종자	0	0	
1209220000	클로버(트리폴리엄종) 종자	0	0	
1209230000	페스큐 종자	0	0	
1209240000	켄터키블루그래스(포아프래텐시스 엘) 종자	0	0	
1209250000	라이그래스(로오리엄 멀티플로럼 램, 로오리엄 페레네 엘) 종자	0	0	
1209291000	루핀종자	0	0	
1209292000	수단그래스 종자	0	0	
1209293000	오차드그래스 종자	0	0	
1209294000	티모디그래스 종자	0	0	
1209299000	기타	0	0	
1209300000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0	0	
1209911010	양파 종자	0	0	
1209911090	기타	0	0	
1209912000	무 종자	0	0	
1209919000	기타	0	0	
1209991010	참나무 종자	0	0	
1209991090	기타	0	0	
1209992000	과수목의 종자	0	0	
1209993000	연초 종자	0	0	
1209994000	잔디 종자	0	0	
1209999000	기타	0	0	
1210100000	호프(분쇄한 것, 분상 또는 펠리트상의 것은 제외한다)	30	15	
1210201000	호프	30	18	
1210202000	루플린	30	15	
1211201100	수삼	222.8	E	
1211201210	본삼	222.8	E	
1211201290	기타	222.8	E	
1211201310	본삼	754.3	E	
1211201390	기타	754.3	E	
1211202110	분	18	E	
1211202120	타브렛 또는 캡슐	18	E	
1211202190	기타	18	E	
1211202210	분	754.3	E	
1211202220	타브렛 또는 캡슐	754.3	E	
1211202290	기타	754.3	E	
1211209100	인삼잎 및 줄기	754.3	E	
1211209200	인삼종자	754.3	E	
1211209900	기타	754.3	E	
1211300000	코카잎	8	5	
1211400000	양귀비줄기	8	5	
1211901000	부자	8	7	
1211902000	황련	8	10	
1211903000	원지	8	5	
1211904000	패모	8	5	
1211905000	두충	8	5	
1211906000	감초	8	10	
1211909010	사인	8	5	
1211909020	산조인	8	10	
1211909030	사군자	8	7	
1211909040	용안육	8	10	
1211909050	산사자	8	7	
1211909060	연자육	8	7	
1211909070	박하	8	7	
1211909080	초피	8	10	
1211909091	건조한 도라지	8	E	
1211909099	기타	8	15	
1212201010	건조한 것	20	3	
1212201020	냉장한 것	20	3	
1212201030	냉동한 것	10	3	
1212201090	기타	2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1212202010	건조한 것	20	5	
1212202020	염장한 것	20	3	
1212202030	냉장한 것	20	3	
1212202040	냉동한 것	45	3	
1212202090	기타	20	3	
1212203010	건조한 것	20	3	
1212203020	냉장한 것	20	3	
1212203030	냉동한 것	45	3	
1212203090	기타	20	3	
1212204010	신선한 것	20	3	
1212204020	냉장한 것	20	3	
1212204030	냉동한 것	45	3	
1212204090	기타	20	3	
1212205010	염장한 것	20	0	
1212205020	냉장한 것	20	0	
1212205030	냉동한 것	45	5	
1212205090	기타	20	3	
1212206010	냉동한 것	45	3	
1212206090	기타	20	3	
1212207011	냉동한 것	45	3	
1212207019	기타	20	3	
1212207021	냉동한 것	45	3	
1212207029	기타	20	3	
1212207031	냉동한 것	45	3	
1212207039	기타	20	3	
1212208011	냉동한 것	45	3	
1212208019	기타	20	3	
1212208021	냉동한 것	45	3	
1212208029	기타	20	3	
1212208031	냉동한 것	45	3	
1212208039	기타	20	3	
1212209011	냉동한 것	45	3	
1212209019	기타	20	3	
1212209091	냉동한 것	45	3	
1212209099	기타	20	3	
1212910000	사탕무	3	0	
1212991000	치커리뿌리(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 변종의 것으로서 볶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	5	
1212992000	구약구의 뿌리	8	15	
1212993000	화분	8	15	
1212994000	사탕수수	3	0	
1212995000	로우커스트두(로우커스트두의 씨를 포함한다)	20	15	
1212996000	살구, 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또는 자두의 핵	8	7	
1212999000	기타	8	7	
12130000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압착 또는 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5	
1214101000	사료용	1	0	
1214109000	기타	10	15	
1214901000	사료용 근채류	100.5	B	
1214909011	사료용	1	0	
1214909019	기타	18	15	
1214909090	기타	100.5	한국양허표 부록 2 가-1 의 11 항 참조	
1301200000	아라비아 검	3	0	
1301901000	올레오레진	3	5	
1301902010	쉘락	3	0	
1301902090	기타	3	0	
1301909000	기타	3	5	
1302110000	아편	8	5	
1302120000	감초의 것	8	10	
1302130000	호프의 것	30	18	
1302191110	백삼엑스	20	15	
1302191120	백삼엑스분	20	15	
1302191190	기타	20	15	
1302191210	홍삼엑스	754.3	E	
1302191220	홍삼엑스분	754.3	E	
1302191290	기타	754.3	E	
1302191900	기타	20	E	
1302192000	캐슈넛쉘액	8	5	
1302193000	생칠	8	10	
1302199010	알로에 수액과 엑스	8	10	
1302199020	콜라엑스	8	3	
1302199091	바닐라 올레오레진 또는 바닐라 엑스	8	7	
1302199099	기타	8	E	
1302200000	펙틴질, 펙티닝산염 및 펙틴산염	8	15	
1302311000	실한천	8	3	
1302312000	분한천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1302319000	기타	8	0	
1302320000	로우커스트두, 로우커스트두의 씨 또는 구아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15	
1302390000	기타	8	15	
1401101000	맹종죽	8	10	
1401102000	청환죽	8	10	
1401109000	기타	8	10	
1401201000	쪼개거나 인발한 것	8	10	
1401209000	기타	8	10	
1401901000	칡줄기껍질	8	10	
1401909000	기타	8	10	
1404200000	면린터	3	0	
1404901000	조각용으로 사용되는 종자, 껍질 및 너트(예: 상아야자)	3	5	
1404902010	저피	3	5	
1404902020	삼아피	3	5	
1404902090	기타	3	7	
1404903010	떡갈잎	5	10	
1404903020	청미래덩굴잎	5	10	
1404903090	기타	5	10	
1404904000	충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재료(예: 케이폭, 식물성 헤어 및 거머리말)(층상으로 한 것인지 또는 지지물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3	5	
1404905000	비 또는 브러시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재료(예: 수수류, 피아사바, 카우치 그라스 및 이스틸리)(다발 또는 꾸러미 상태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3	0	
1404906010	오배자	3	5	
1404906020	아몬드 헐	3	5	
1404906090	기타	3	5	
1404909000	기타	3	5	
1501001010	산가가 1 이하인 것	3	0	
1501001090	기타	3	0	
1501002000	가금지	3	0	
1502001010	산가가 2 이하인 것	2	3	
1502001090	기타	2	10	
1502009000	기타	3	3	
1503002000	라드유	3	3	
1503009000	기타	3	3	
1504101000	상어의 간유와 그 분획물	3	0	
1504109000	기타	3	0	
1504200000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간유는 제외한다)	3	5	
1504301000	경유와 그 분획물	3	0	
1504309000	기타	3	0	
1505001000	조상의 울그리스	3	3	
1505009000	기타	3	3	
1506001000	우각유와 그 분획물	3	3	
1506009000	기타	3	3	
1507101000	식품용	5.4	10	
1507102000	바이오디젤 제조용의 것	5.4	10	
1507109000	기타	5.4	10	
1507901010	식품용	5.4	10	
1507901020	바이오디젤 제조용의 것	5.4	10	
1507901090	기타	5.4	7	
1507909000	기타	8	7	
1508100000	조유	27	15	
1508901000	정제유	27	15	
1508909000	기타	27	15	
1509100000	버어진	8	10	
1509900000	기타	8	10	
1510000000	기타 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만 얻어진 것으로서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하며, 이들의 유 또는 그 분획물이 제 1509 호의 유 또는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8	10	
1511100000	조유	3	3	
1511901000	팜올레인	2	3	
1511902000	팜스테아린	2	3	
1511909000	기타	2	3	
1512111000	해바라기씨유	10	7	
1512112000	잇꽃유	8	5	
1512191010	해바라기씨유	10	10	
1512191020	잇꽃유	8	5	
1512199010	해바라기씨유	10	7	
1512199020	잇꽃유	8	5	
1512210000	조유(고시폴을 제거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4	5	
1512291000	정제유	5.4	7	
1512299000	기타	8	5	
1513110000	조유	3	3	
1513191000	정제유	3	3	
1513199000	기타	3	3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1513211000	팜핵유	5	3	
1513212000	바바수유	8	3	
1513291010	팜핵유	5	5	
1513291020	바바수유	8	3	
1513299000	기타	8	3	
1514110000	조유	8	10	
1514191000	정제유	10	5	
1514199000	기타	10	5	
1514911000	기타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8	15	
1514912000	겨자유	30	15	
1514991010	기타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10	15	
1514991020	겨자유	30	15	
1514999000	기타	10	15	
1515110000	조유	8	7	
1515190000	기타	8	10	
1515210000	조유	8	10	
1515290000	기타	8	10	
1515300000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8	10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630 퍼센트 또는 12,060 원/kg, 양자중 고액(올)	E	
1515901000	들기름과 그 분획물	36	18	
1515909010	미강유와 그 분획물	8	15	
1515909020	동백유와 그 분획물	8	10	
1515909030	호호바유와 그 분획물	8	10	
1515909040	동유와 그 분획물	8	10	
1515909090	기타	8	10	
1516101000	우지와 그 분획물	8	5	
1516102000	경유와 그 분획물	8	0	
1516109000	기타	8	10	
1516201010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	36	15	
1516201020	해바라기씨유와 그 분획물	36	18	
1516201030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와 그 분획물	36	18	
1516201040	들기름과 그 분획물	36	15	
1516201050	참기름과 그 분획물	36	15	
1516202010	야자(코프라)유와 그 분획물	8	7	
1516202020	팜유와 그 분획물	8	7	
1516202030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8	7	
1516202040	면실유와 그 분획물	8	7	
1516202050	대두유와 그 분획물	8	7	
1516202090	기타	8	10	
1517100000	마가린(액상마가린은 제외한다)	8	10	
1517901000	이미테이션라드	8	7	
1517902000	쇼트닝	8	7	
1517909000	기타	8	10	
1518001000	탈수피마자유	8	7	
1518002000	에폭시화한 대두유	8	7	
1518009000	기타	8	10	
1520000000	글리세롤(조상의 것에 한한다), 글리세롤 수 및 글리세롤 폐액	8	7	
1521101000	카나버 왁스	8	7	
1521102000	팜 왁스	8	7	
1521109000	기타	8	7	
1521901000	경납	8	3	
1521902000	밀납	8	10	
1521909000	기타	8	7	
1522001010	천연의 것	8	7	
1522001090	기타	8	7	
1522009000	기타	8	7	
1601001000	소시지	18	5	
1601009000	기타	30	5	
1602100000	균질화한 조제품	30	15	
16022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10	
1602209000	기타	30	10	
16023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10	
1602319000	기타	30	7	
1602321010	삼계탕	30	10	
1602321090	기타	30	E	
1602329000	기타	30	10	
16023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10	
1602399000	기타	30	15	
16024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5	
1602419000	기타	27	5	
16024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5	
1602429000	기타	27	5	
16024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E	
1602499000	기타	27	E	
16025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72	15	
1602509000	기타	72	15	
16029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1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1602909000	기타	30	15	
1603001000	육 엑스	30	E	
1603002000	육즙	30	15	
1603003000	어류의 엑스	30	3	
1603004000	어류의 즙	30	3	
1603009000	기타	30	3	
16041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7	
1604119000	기타	20	7	
16041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0	
1604129000	기타	20	0	
16041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3	
1604139000	기타	20	0	
1604141011	기름에 담근 것	20	7	
1604141012	보일드한 것	20	7	
1604141019	기타	20	7	
1604141021	기름에 담근 것	20	7	
1604141022	보일드한 것	20	7	
1604141029	기타	20	7	
1604141031	기름에 담근 것	20	7	
1604141032	보일드한 것	20	7	
1604141039	기타	20	7	
1604149000	기타	20	7	
160415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1604159000	기타	20	5	
160416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3	
1604169000	기타	20	3	
1604191010	꽁치	20	10	
1604191020	전갱이	20	5	
1604191030	뱀장어(앵귈라종)	20	5	
1604191090	기타	20	3	
1604199010	쥐치포	20	5	
1604199090	기타	20	3	
1604201000	생선 페이스트	20	3	
1604202000	생선 마리네이드	20	3	
1604203000	생선 소시지	20	3	
1604204010	게맛의 것	20	3	
1604204090	기타	20	3	
1604209000	기타	20	0	
1604301000	캐비아	20	0	
1604302000	캐비아 대용물	20	0	
160510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1605101020	훈제한 것(밀폐용기에 넣은 것은 제외한다)	20	3	
1605101091	붉은대게살	20	7	
1605101099	기타	20	7	
1605109000	기타	20	3	
16052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1605209010	훈제한 것	20	3	
1605209020	브레드한 것	20	5	
1605209090	기타	20	7	
16053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7	
1605309000	기타	20	3	
16054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7	
1605409000	기타	20	7	
1605901010	굴	20	3	
1605901020	홍합	20	3	
1605901030	바지락	20	0	
1605901040	새조개	20	0	
1605901070	골뱅이	20	10	
1605901080	오징어	20	3	
1605901091	전복	20	7	
1605901092	소라	20	5	
1605901099	기타	20	3	
1605902010	오징어	20	5	
1605902020	골뱅이	20	7	
1605902030	새조개	20	0	
1605902090	기타	20	3	
1605909010	조미오징어	20	7	
1605909020	해삼	20	0	
1605909030	골뱅이	20	7	
1605909040	홍합	20	3	
1605909090	기타	20	7	
1701111000	당도가 98.5 도 이하인 것	3	0	
1701112000	당도가 98.5 도를 초과하는 것	3	0	
1701121000	당도가 98.5 도 이하인 것	3	0	
1701122000	당도가 98.5 도를 초과하는 것	3	0	
1701910000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	35	E	
1701990000	기타	35	18	부속서 6-가 참조
1702111000	유당	49.5	10	
1702119000	유당시럽	20	15	
1702191000	유당	49.5	E	
1702199000	유당시럽	20	E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1702201000	단풍당	8	7	
1702202000	단풍당시럽	8	7	
1702301000	포도당	8	15	
1702302000	포도당시럽	8	15	
1702401000	포도당	8	15	
1702402000	포도당시럽	8	15	
1702500000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8	15	
1702601000	과당	8	15	
1702602000	과당시럽	8	15	
1702901000	인조꿀	243	E	
1702902000	캐러멜당	8	10	
1702903000	맥아당	8	10	
1702909000	기타	8	15	
1703101000	주정 제조용의 것	3	10	
1703109000	기타	3	5	
1703901000	주정 제조용의 것	3	0	
1703909000	기타	3	3	
1704100000	추잉검(당으로 도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8	15	
1704901000	감초엑스(과자로 만들어진 것은 제외한다)	8	15	
1704902010	드롭프스	8	10	
1704902020	캐러멜	8	10	
1704902090	기타	8	15	
1704909000	기타	8	7	
1801001000	생 것	2	0	
1801002000	볶은 것	8	0	
1802001000	코코아의 각과 피	8	0	
1802009000	기타	8	5	
1803100000	탈지하지 아니한 것	5	10	
1803200000	전부 또는 일부 탈지한 것	5	3	
1804000000	코코아 버터(지 및 유)	5	3	
1805000000	코코아 분말(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5	10	
1806100000	코코아 분말(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8	15	
1806201000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8	5	
1806209010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8	5	
1806209090	기타	8	5	
1806311000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8	5	
1806319000	기타	8	5	
1806321000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8	5	
1806329000	기타	8	5	
1806901000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8	5	
1806902111	조제분유의 것	36	17	
1806902119	기타	40	17	
1806902191	오트밀의 것	8	3	
1806902199	기타	8	3	
1806902210	보리가루의 것	8	5	
1806902290	기타	-	R	
1806902910	맥아엑스의 것	30	5	
1806902920	제 0401 호부터 제 0404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36	10	
1806902991	오트밀의 것	8	3	
1806902992	보리가루의 것	8	5	
1806902999	기타	-	R	
1806903010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	5.4	5	
1806903091	낟알상의 쌀	8	E	
1806903099	기타	8	5	
1806909010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 퍼센트 이상인 것)	8	5	
1806909090	기타	8	5	
1901101010	조제분유	36	한국양허표 부록 2 가-1 의 12 항 참조	
1901101090	기타	40	한국양허표 부록 2 가-1 의 12 항 참조	
1901109010	오트밀의 것	8	5	
1901109090	기타	8	7	
1901201000	쌀가루의 것	-	R	
1901202000	보리가루의 것	8	5	
1901209000	기타	-	R	
1901901000	맥아엑스	30	E	
1901902010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30 퍼센트 이하인 것	36	1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1901902020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3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36	15	
1901909010	오트밀	8	5	
1901909091	쌀가루의 것	-	R	
1901909092	보리가루의 것	8	5	
1901909099	기타	-	R	
1902111000	스파게티	8	15	
1902112000	마카로니	8	7	
1902119000	기타	8	7	
1902191000	국수	8	15	
1902192000	당면	32 퍼센트 또는 253 원/kg, 양자중 고액(율)	15	
1902193000	냉면	8	5	
1902199000	기타	8	10	
190220000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10	
1902301010	라면	8	0	
1902301090	기타	8	0	
1902309000	기타	8	10	
1902400000	쿠우스쿠우스	8	10	
1903001000	타피오카	8	10	
1903009000	기타	8	10	
1904101000	콘 플레이크	5.4	7	
1904102000	콘 칩	5.4	7	
1904103000	퍼프드 라이스	5.4	3	
1904109000	기타	5.4	5	
1904201000	무슬리 형태의 조제식료품의 것	45	18	
1904209000	기타	5.4	5	
1904300000	불거소맥	8	3	
1904901010	찌거나 삶은 쌀	50	E	
1904901090	기타	8	E	
1904909000	기타	8	5	
1905100000	귀리빵	8	10	
1905200000	진저브레드 및 이와 유사한 것	8	10	
1905310000	스위트 비스킷	8	15	
1905320000	와플과 웨이퍼	8	15	
1905400000	러스크, 토우스트브레드 및 이와 유사한 토우스트 물품	8	15	
1905901010	빵	8	15	
1905901020	건빵	8	15	
1905901030	파이와 케이크	8	15	
1905901040	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	8	15	
1905901050	미과	8	15	
1905901090	기타	8	15	
1905909010	제약용에 적합한 종류의 빈 캡슐	8	7	
1905909020	라이스 페이퍼	8	7	
1905909090	기타	8	7	
2001100000	오이류	30	15	
2001901000	과실과 견과류	30	15	
2001909010	쪽파	30	15	
2001909020	토마토	30	15	
2001909030	꽃양배추	30	15	
2001909040	스위트콘	30	15	
2001909050	염교	30	15	
2001909060	마늘	30	15	
2001909070	양파	30	15	
2001909090	기타	30	15	
2002100000	전체 또는 조각상의 토마토	8	15	
2002901000	토마토페이스트(가용성 고형분이 24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5	10	
2002909000	기타	8	10	
2003104000	양송이 버섯	20	15	
2003109000	기타	20	15	
2003200000	송로	20	15	
2003901000	표고버섯	20	E	
2003902000	송이버섯	20	15	
2003909000	기타	20	15	
2004100000	감자	18	3	
2004901000	스위트콘	30	15	
2004909000	기타	30	E	
2005101000	유아용 퓨레콘	20	10	
2005109000	기타	20	10	
2005201000	플레이크로 만든 감자크로켓	20	15	
2005209000	기타	20	15	
2005400000	완두(피섬 새티범)	20	15	
2005511000	녹두의 것	20	15	
2005512000	팥의 것	20	15	
2005519000	기타	20	15	
2005591000	녹두의 것	20	1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005592000	팥의 것	20	15	
2005599000	기타	20	15	
2005600000	아스파라거스	20	15	
2005700000	올리브	20	15	
2005800000	스위트콘(쟈메이스 변종, 사카라타)	15	15	
2005910000	죽순	20	15	
2005991000	김치	20	15	
2005992000	사우어크라우트	20	15	
2005999000	기타	20	15	
2006001000	마롱 글라세	30	E	
2006002000	파인애플	30	15	
2006003000	생강	30	15	
2006004000	연뿌리	30	10	
2006005000	완두(피셈 새티범)	20	10	
2006006010	탈각한 콩	20	10	
2006006090	기타	20	10	
2006007000	아스파라거스	20	7	
2006008000	올리브	20	7	
2006009010	스위트콘(쟈메이스 변종, 사카라타)	15	7	
2006009020	죽순	20	15	
2006009030	기타 채소의 것	20	7	
2006009090	기타	30	15	
2007100000	균질화한 조제품	30	15	
2007911000	잼, 과실젤리 및 마말레이드	30	15	
2007919000	기타	30	15	
2007991000	잼, 과실젤리 및 마말레이드	30	18	
2007999000	기타	30	15	
2008111000	피넛 버터	50	10	
2008119000	기타	63.9	10	
2008191000	밤	50	18	
2008192000	코코넛	45	5	
2008199000	기타	45	10	
2008200000	파인애플	45	10	
2008301000	유자	45	5	
2008309000	기타	45	10	
2008400000	배	45	10	
2008500000	살구	45	5	
2008600000	버찌	45	10	
2008701000	설탕을 첨가하고 밀폐용기에 넣은 것	50	10	
2008709000	기타	45	5	
2008800000	초본류 딸기	45	7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008910000	팜 하트	45	10	
2008921010	설탕을 첨가하고 밀폐용기에 넣은 것	50	10	
2008921090	기타	45	5	
2008922000	과실 샐러드	45	5	
2008929000	기타	45	5	
2008991000	포도	45	7	
2008992000	사과	45	7	
2008993000	팝콘	45	7	
2008994000	염장초피	45	10	
2008999000	기타	45	10	
2009110000	냉동한 것	54	5	
2009120000	냉동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54	5	
2009190000	기타	54	5	
2009210000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30	7	
2009290000	기타	30	10	
2009311000	레몬주스	50	5	
2009312000	라임주스	50	5	
2009319000	기타	54	10	
2009391000	레몬주스	50	10	
2009392000	라임주스	50	5	
2009399000	기타	54	10	
2009410000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50	5	
2009490000	기타	50	10	
2009500000	토마토주스	30	5	
2009610000	브릭스 값이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45	5	
2009690000	기타	45	5	
2009710000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45	10	
2009790000	기타	45	7	
2009801010	복숭아주스	50	10	
2009801020	딸기주스	50	10	
2009801090	기타	50	10	
2009802000	채소주스	30	10	
2009901010	오렌지주스를 주기제로 한 것	50	10	
2009901020	사과주스를 주기제로 한 것	50	10	
2009901030	포도주스를 주기제로 한 것	50	10	
2009901090	기타	50	10	
2009902000	채소의 것	30	7	
2009909000	기타	50	10	
2101111000	인스턴트 커피	8	5	
2101119000	기타	8	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101121000	인스턴트 커피의 조제품	8	5	
2101129010	밀크, 크림 또는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8	5	
2101129090	기타	8	5	
2101201000	설탕, 레몬 또는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40	15	
2101209011	티백 포장의 것	40	15	
2101209019	기타	40	15	
2101209090	기타	40	15	
2101301000	보리의 것	8	3	
2101309000	기타	8	3	
2102101000	양조효모	8	5	
2102102000	증류효모	8	10	
2102103000	제빵효모	8	10	
2102104000	배양효모	8	7	
2102109000	기타	8	10	
2102201000	불활성 효모	8	5	
2102202000	누룩	8	10	
2102203010	정제상의 것	8	5	
2102203090	기타	8	5	
2102204010	정제상의 것	8	5	
2102204090	기타	8	5	
2102209000	기타	8	10	
2102300000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8	7	
2103100000	간장	8	5	
2103201000	토마토 케찹	8	7	
2103202000	토마토 소스	45	15	
2103301000	겨자의 분과 조분	8	3	
2103302000	조제한 겨자	8	7	
2103901010	된장	8	5	
2103901020	춘장	8	5	
2103901030	고추장	45	5	
2103901090	기타	45	5	
2103909010	마요네스	8	3	
2103909020	인스턴트 카레	45	5	
2103909030	혼합조미료	45	5/15 [2]	
2103909040	메주	14	7	
2103909090	기타	45	15	
2104101000	육류의 것	18	E	
2104102000	어류의 것	30	5	
2104103000	채소의 것	18	15	
2104109000	기타	18	15	
2104200000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30	1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105001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8	7	
2105001090	기타	8	7	
2105009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8	5	
2105009090	기타	8	3	
2106101000	두부	8	3	
2106109020	단백질 농축물	8	0	
2106109030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	8	0	
2106901010	콜라 베이스	8	0	
2106901020	과일향의 음료베이스	8	7	
2106901090	기타	8	15	
2106902000	당시럽(향미 또는 착색제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8	10	
2106903011	인삼차	8	10	
2106903019	기타	8	3	
2106903021	홍삼차	754.3	E	
2106903029	기타	754.3	E	
2106904010	김	8	0	
2106904090	기타	8	3	
2106909010	커피크리머	8	3	
2106909021	버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30 퍼센트 이하인 것	8	12	
2106909022	버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30 퍼센트 초과 70 퍼센트 이하인 것	8	12	
2106909023	버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7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8	10	
2106909030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8	7	
2106909040	자기소화효모 및 기타 효모엑스	8	7	
2106909050	향미용 조제품	8	7	
2106909060	도토리분	8	10	
2106909070	알로에를 기제로 한 조제품	8	5	
2106909080	음료제조용의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것은 제외하며, 알코올용량이 전용량의 0.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30	7	
2106909091	로열젤리 및 벌꿀조제품	8	E	
2106909099	기타	8	5	
2201100000	광수와 탄산수	8	3	
2201901000	얼음과 눈	8	3	
2201909000	기타	8	7	
2202101000	착색한 것	8	7	
2202109000	기타	8	10	
2202901000	인삼음료	8	7	
2202902000	과즙음료	9	7	
2202903000	식혜	8	7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202909000	기타	8	7	
2203000000	맥주	30	7	
2204100000	발포성 포도주	15	0	
2204211000	붉은 포도주	15	0	
2204212000	흰 포도주	15	0	
2204219000	기타	15	0	
2204291000	붉은 포도주	15	0	
2204292000	흰 포도주	15	0	
2204299000	기타	15	0	
2204300000	기타 포도즙	30	0	
2205100000	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15	10	
2205900000	기타	15	10	
2206001010	사과주	15	10	
2206001020	배술	15	10	
2206001090	기타	15	10	
2206002010	청주	15	3	
2206002020	약주	15	3	
2206002030	탁주	15	3	
2206002090	기타	15	15	
2206009010	와인쿨러(제 2009 호 또는 제 2202 호의 물품을 첨가한 것에 한하며, 포도를 원료로 한 것을 포함한다)	15	5	
2206009090	기타	15	10	
2207101000	조주정	10	E	
2207109010	주류 제조용 발효주정	270	E	
2207109090	기타	30	10	
2207200000	변성에틸알코올 및 기타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을 불문한다)	8	15	
2208201000	꼬냑	15	10	
2208209000	기타	15	10	
2208301000	스카시 위스키	20	15	
2208302000	버본 위스키	20	10	
2208303000	라이 위스키	20	10	
2208309000	기타	20	10	
2208400000	럼 및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기타 증류주	20	10	
2208500000	진 및 제네바	20	10	
2208600000	보드카	20	10	
2208701000	인삼주	20	5	
2208702000	오가피주	20	15	
2208709000	기타	20	10	
2208901000	브랜디류(소호 제 2208.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20	15	
2208904000	소주	30	3	
2208906000	고량주	30	5	
2208907000	데낄라	20	5	
2208909000	기타	30	5	
2209001000	양조식초	8	5	
2209009000	기타	8	7	
2301101000	육 또는 설육의 분, 조분 및 펠리트	9	E	
2301102000	수지박	5	5	
2301201000	어류의 분, 조분 및 펠리트	5	0	
2301209000	기타	5	0	
2302100000	옥수수의 것	5	5	
2302300000	밀의 것	2	0	
2302401000	쌀의 것	5	5	
2302409000	기타	5	5	
2302500000	채두류의 것	5	5	
230310000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0	0	
2303200000	비트펄프, 버개스 및 기타 설탕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5	0	
2303300000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5	0	
2304000000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8	0	
2305000000	낙화생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0	
2306100000	면실의 것	2	0	
2306200000	아마인의 것	5	0	
2306300000	해바라기씨의 것	5	3	
2306410000	저에루크산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의 것	0	0	
2306490000	기타	0	0	
2306500000	야자 또는 코프라의 것	2	0	
2306600000	팜넛 또는 핵의 것	2	0	
2306901000	참깨의 것	63 퍼센트 또는 72 원/kg, 양자중 고액(율)	10	
2306902000	들깨의 것	5	3	
2306903000	옥수수 배(胚)의 것	5	3	
2306909000	기타	5	3	
2307000000	포도주박, 생주석	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308001000	도토리	5	10	
2308002000	마로니에 열매	5	10	
2308003000	면실피	5	0	
2308009000	기타	46.4	10	
2309101000	개사료	5	0	
2309102000	고양이 사료	5	0	
2309901010	양돈용의 것	4.2	0	
2309901020	양계용의 것	4.2	0	
2309901030	어류용의 것	5	0	
2309901040	축우용의 것	4.2	0	
2309901091	대용유의 것	71	15	
2309901099	기타	5	0	
2309902010	무기물 또는 광물질을 주로 한 것(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	50.6	15	
2309902020	향미제를 주로 한 것	50.6	15	
2309902091	1994.12.31 현재 수입자동승인 품목	5	0	
2309902099	기타	50.6	15	
2309903010	항생물질을 주로 한 것	5	0	
2309903020	비타민을 주로 한 것	5	0	
2309903030	미량광물질을 주로 한 것	5	0	
2309903090	기타	5	0	
2309909000	기타	50.6	15	
2401101000	황색종	20	10	
2401102000	버어리종	20	10	
2401103000	오리엔트종	20	10	
2401109000	기타	20	10	
2401201000	황색종	20	10	
2401202000	버어리종	20	10	
2401203000	오리엔트종	20	10	
2401209000	기타	20	10	
2401301000	잎의 주맥	20	10	
2401302000	잎 부스러기	20	10	
2401309000	기타	20	10	
2402101000	시가	40	15	
2402102000	셔루트	40	15	
2402103000	시가릴로	40	15	
2402201000	필터담배	40	15	
2402209000	기타	40	15	
2402900000	기타	40	15	
2403101000	파이프 담배	40	15	
2403109000	기타	40	1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403911000	판상엽	32.8	15	
2403919000	기타	40	15	
2403991000	씹는 담배	40	15	
2403992000	코 담배	40	15	
2403993000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	40	15	
2403999000	기타	40	15	
2501001010	암염	1	0	
2501001020	천일염	1	0	
2501009010	식염	8	0	
2501009020	순염화나트륨	8	0	
2501009090	기타	8	0	
2502000000	황화철광(배소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	0	
2503000000	각종 황(승화황, 침강황 및 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2	0	
2504101000	인상흑연	3	0	
2504102000	토상흑연	3	0	
2504109000	기타	3	0	
2504901000	인상흑연	3	0	
2504902000	토상흑연	3	0	
2504909000	기타	3	0	
2505100000	규사	3	0	
2505901010	점토사	3	0	
2505901020	장석사	3	0	
2505901090	기타	3	0	
2505909000	기타	3	0	
2506101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0.06 퍼센트 미만인 것	3	0	
2506102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0.06 퍼센트 이상 0.1 퍼센트 이하인 것	3	0	
2506103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0.1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3	0	
2506201000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3	0	
2506209000	기타	3	0	
2507001010	하소하지 아니한 것	3	0	
2507001090	기타	3	0	
2507002010	가이로메	3	0	
2507002020	기부시	3	0	
2507002090	기타	3	0	
2507009000	기타	3	0	
2508100000	벤토나이트	3	0	
2508300000	내화점토	3	0	
2508401000	산성백토	3	0	
2508402000	탈색토와 표포토	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508409000	기타	3	0	
2508501000	홍주석	3	0	
2508502000	남정석	3	0	
2508503000	규선석	3	0	
2508600000	물라이트	3	0	
2508701000	샤모트	3	0	
2508702000	다이나스어드	3	0	
2509000000	초크	3	0	
2510101000	천연인산칼슘	0	0	
2510102000	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	1	0	
2510109000	기타	1	0	
2510201000	천연인산칼슘	3	0	
2510202000	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	3	0	
2510209000	기타	3	0	
2511100000	천연황산바륨(중정석)	3	0	
2511200000	천연탄산바륨(독중석)	3	0	
2512000000	규조토(예: 키이젤거어, 트리폴라이트 및 다이아토마이트)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에 한한다)	3	0	
2513101000	조상의 것 또는 불규칙한 조각[분쇄한 부석("빔스키")을 포함한다]	3	0	
2513109000	기타	3	0	
2513201010	금강사	3	0	
2513201020	천연커런덤	3	0	
2513201030	천연석류석	3	0	
2513201090	기타	3	0	
2513202010	금강사	3	0	
2513202020	천연커런덤	3	0	
2513202030	천연석류석	3	0	
2513202090	기타	3	0	
2514001000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3	5	
2514009000	기타	3	5	
2515111000	대리석	3	0	
2515112000	트래버틴	3	0	
2515121000	대리석	3	0	
2515122000	트래버틴	3	0	
2515200000	에코신과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석회질의 암석, 앨러바스터	3	0	
2516110000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3	5	
2516120000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	3	5	
2516201000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3	5	
2516209000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	3	5	
2516901000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3	5	
2516909000	기타	3	5	
2517101000	자갈	3	0	
2517102000	쇄석	3	0	
2517109000	기타	3	0	
2517200000	슬랙, 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소호 제 2517.10 호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	0	
2517300000	타르매카담	3	0	
2517410000	대리석의 것	3	0	
2517491000	현무암의 것	3	5	
2517492000	화강암의 것	3	5	
2517499000	기타	3	5	
2518100000	하소 또는 소결하지 아니한 백운석	3	0	
2518200000	하소 또는 소결한 백운석	3	0	
2518300000	응결백운석	3	0	
2519100000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3	0	
2519901000	용융 또는 소결한 마그네시아	3	0	
2519902000	천연산화마그네슘	3	0	
2519909000	기타	3	0	
2520101000	석고	5	0	
2520102000	무수석고	5	0	
2520201000	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하소하거나 미세하게 분쇄한 것	5	0	
2520209000	기타	5	0	
2521001000	석회석	3	0	
2521009000	기타	3	0	
2522100000	생석회	3	0	
2522200000	소석회	3	0	
2522300000	수경성 석회	3	0	
2523100000	시멘트클링커	5	7	
2523210000	백시멘트(인공적으로 착색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7	
2523290000	기타	5	7	
2523300000	알루미나시멘트	8	7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530909030	어드컬러	8	0	
2530909040	천연의 운모상 산화철	8	0	
2530909050	천연빙정석과 천연치올라이트	3	0	
2530909091	천연탄산칼슘	3	0	
2530909099	기타	3	0	
2601111000	적철광	0	0	
2601112000	자철광	0	0	
2601119000	기타	0	0	
2601121000	적철광	0	0	
2601122000	자철광	0	0	
2601129000	기타	0	0	
2601200000	배소한 황화철광	1	0	
2602000000	망간광과 그 정광(건조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0 퍼센트 이상인 철 망간광과 그 정광을 포함한다)	0	0	
2603000000	동광과 그 정광	0	0	
2604000000	니켈광과 그 정광	0	0	
2605000000	코발트광과 그 정광	0	0	
260600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	0	0	
2607000000	연광과 그 정광	0	0	
2608000000	아연광과 그 정광	0	0	
2609000000	주석광과 그 정광	0	0	
2610000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	0	0	
2611001000	흑중석	0	0	
2611002000	회중석	0	0	
2611009000	기타	0	0	
2612100000	우라늄광과 그 정광	0	0	
2612200000	토륨광과 그 정광	0	0	
2613100000	배소한 것	0	0	
2613900000	기타	0	0	
2614001000	루틸(금홍석)	0	0	
2614002000	아나타스(예추석)	0	0	
2614009000	기타	0	0	
261510000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	0	0	
2615901000	니오븀광과 그 정광	0	0	
2615902000	탄탈륨광과 그 정광	0	0	
2615903000	바나듐광과 그 정광	0	0	
2616100000	은광과 그 정광	0	0	
2616901000	금광과 그 정광	0	0	
2616902000	백금광과 그 정광(백금족의 광과 그 정광을 포함한다)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523901000	슬랙시멘트	5	7	
2523909000	기타	5	7	
2524100000	청석면	5	0	
2524901000	갈석면	5	0	
2524902000	백석면	5	0	
2524909000	기타	5	0	
2525100000	조운모 및 판상 또는 쪼갠 운모	3	0	
2525200000	운모분	3	0	
2525300000	운모 웨이스트	3	0	
2526101000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	3	0	
2526109000	기타	3	0	
2526200000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	5	0	
2528100000	천연붕산나트륨과 그 정광(하소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3	0	
2528901000	붕산칼슘	3	0	
2528902000	염화붕산마그네슘	3	0	
2528903000	천연붕산	3	0	
2528909000	기타	3	0	
2529100000	장석	3	0	
2529211000	분말의 것	2	0	
2529219000	기타	2	0	
2529221000	분말의 것	2	0	
2529229000	기타	2	0	
2529301000	백류석	2	0	
2529302000	하석	2	0	
2529303000	하석섬장암	2	0	
2530101000	질석	3	0	
2530102000	진주암과 녹니석	3	0	
2530200000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황산마그네슘)	3	0	
2530901000	천연 황화비소	3	0	
2530902000	건전지 제조용에 적합한 연망간광	3	0	
2530903000	스트론티아나이트	3	0	
2530904000	주사	3	0	
2530905000	납석	3	0	
2530906000	불석	3	0	
2530907000	명반석	3	0	
2530908000	규회석	3	0	
2530909010	도석	3	0	
2530909020	견운모	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703001000	응결하지 아니한 것	1	0	
2703002000	응결한 것	1	0	
2704001010	석탄에서 제조한 것	3	0	
2704001090	기타	3	0	
2704002000	반성코크스	3	0	
2704003000	레토르트 카본	3	0	
2705000000	석탄가스, 수성가스, 발생로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 및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5	0	
2706001000	콜타르	5	0	
2706002000	갈탄타르 또는 토탄타르	5	0	
2706009000	기타	5	0	
2707100000	벤조올(벤젠)	3	0	
2707200000	톨루올(톨루엔)	3	0	
2707300000	크실올(크실렌)	3	0	
2707400000	나프탈렌	5	0	
2707500000	기타 방향족 탄화수소의 혼합물[섭씨 250 도에서 에이·에스·티·엠·디(ASTM D)86 의 방법으로 증류한 양이 전용량의 65 퍼센트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인 것에 한한다]	5	0	
2707910000	크레오소트유	5	0	
2707991000	솔벤트 나프타	5	0	
2707992000	안트라센	5	0	
2707993000	페놀(석탄산)	8	0	
2707999000	기타	5	0	
2708100000	피치	5	0	
2708200000	피치코크스	5	0	
270900101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3	5	
270900102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	3	5	
270900103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3	5	
270900104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3	5	
270900105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3	5	
270900106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3	5	
270900107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	3	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617100000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	0	0	
2617901000	수은광과 그 정광	0	0	
2617902000	게르마늄광과 그 정광	0	0	
2617903000	베릴륨광과 그 정광	0	0	
2617904000	비스무트광과 그 정광	0	0	
2617909000	기타	0	0	
2618000000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입상의 슬랙(슬랙샌드)	2	0	
2619001010	용광로 슬랙	2	0	
2619001090	기타	2	0	
2619002000	드로스	2	0	
2619003000	스케일링	2	0	
2619009000	기타	2	0	
2620110000	경아연 스펠타	2	0	
2620190000	기타	2	0	
2620210000	유연 가솔린 슬러지 및 유연 안티녹제 화합물 슬러지	2	0	
2620290000	기타	2	0	
2620300000	주로 동을 함유하는 것	2	0	
2620400000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2	0	
2620600000	비소, 수은, 탈륨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의 채취용 또는 그 화합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2	0	
2620910000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 또는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	2	0	
2620990000	기타	2	0	
2621100000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와 잔재물	2	0	
2621900000	기타	2	0	
2701110000	무연탄	0	0	
2701121000	강점결성 코크스용탄	0	0	
2701122000	기타 코크스용탄	0	0	
2701129010	휘발성물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2 퍼센트 미만인 것(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 기준에 의한다)	0	0	
2701129090	기타	0	0	
2701190000	기타 석탄	0	0	
2701201000	연탄	1	0	
2701202000	마젝탄	1	0	
2701209000	기타	1	0	
2702100000	갈탄(분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응결한 것은 제외한다)	1	0	
2702200000	응결한 갈탄	1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70900108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3	5	
2709001090	기타	3	5	
2709002000	역청유	3	5	
2710111000	자동차 휘발유	5	0	
2710112000	항공 휘발유	5	0	
2710113000	프로필렌테트라머	5	0	
2710114000	나프타	0	0	
2710115000	엔 · 지 · 엘(NGL)	0	0	
2710119000	기타	5	0	
2710191010	제트 연료유	5	0	
2710191090	기타	5	0	
2710192010	등유	5	0	
2710192020	제트 연료유	5	0	
2710192030	노르말 파라핀	5	0	
2710192090	기타	5	0	
2710193000	경유	5	0	
2710194010	경질중유(방카 에이유)	5	0	
2710194020	중유(방카 비유)	5	0	
2710194030	방카 씨유	5	0	
2710194090	기타	5	0	
2710195010	조유	7	0	
2710195020	윤활유기유	7	0	
2710196000	신전유	8	0	
2710197110	항공기용 기관오일	7	0	
2710197120	자동차용 기관오일	7	0	
2710197130	선박용 기관오일	7	0	
2710197210	실린더오일	7	0	
2710197220	스핀들오일	7	0	
2710197230	기어오일	7	0	
2710197240	터빈오일	7	0	
2710197250	냉동기오일	7	0	
2710197310	콤파운드오일	7	0	
2710197320	유동파라핀	7	0	
2710197330	자동변속기용 윤활유	7	0	
2710197410	방청유	7	0	
2710197420	절삭유	7	0	
2710197430	세척유	7	0	
2710197440	주형이형유	7	0	
2710197450	유압브레이크유	7	0	
2710197510	프로세스유	7	0	
2710197520	전기전열유	7	0	
2710197530	열처리유	7	0	
2710197540	열매체유	7	0	
2710197900	기타	7	0	
2710198010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	8	0	
2710198020	칼슘을 첨가한 것	8	0	
2710198030	나트륨을 첨가한 것	8	0	
2710198040	리튬을 첨가한 것	8	0	
2710198090	기타	8	0	
2710199000	기타	8	0	
2710911010	자동차 휘발유, 항공 휘발유 및 제트 연료유의 것	5	0	
2710911020	나프타 및 엔 · 지 · 엘의 것	0	0	
2710911090	기타	5	0	
2710912010	등유 및 제트 연료유의 것	5	0	
2710912090	기타	5	0	
2710913000	경유의 것	5	0	
2710914010	경질중유(방카 에이유), 중유(방카 비유) 및 방카 씨유의 것	5	0	
2710914090	기타	5	0	
2710915000	조유, 윤활유(신전유는 제외한다) 및 윤활유기유의 것	7	0	
2710919000	기타	8	0	
2710991010	자동차 휘발유, 항공 휘발유 및 제트 연료유의 것	5	0	
2710991020	나프타 및 엔 · 지 · 엘의 것	0	0	
2710991090	기타	5	0	
2710992010	등유 및 제트 연료유의 것	5	0	
2710992090	기타	5	0	
2710993000	경유의 것	5	0	
2710994010	경질중유(방카 에이유), 중유(방카 비유) 및 방카 씨유의 것	5	0	
2710994090	기타	5	0	
2710995000	조유, 윤활유(신전유를 제외한다) 및 윤활유기유의 것	7	0	
2710999000	기타	8	0	
2711110000	천연가스	3	0	
2711120000	프로판	3	0	
2711130000	부탄	3	0	
2711141000	에틸렌	5	0	
2711142000	프로필렌	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804100000	수소	5.5	0	
2804210000	아르곤	5.5	0	
2804291000	헬륨	5.5	0	
2804292000	네온	5.5	0	
2804293000	크립톤	5.5	0	
2804294000	크세논	5.5	0	
2804299000	기타	5.5	0	
2804300000	질소	5.5	0	
2804400000	산소	5.5	0	
2804501000	붕소	5.5	0	
2804502000	텔루르	5.5	0	
2804610000	규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 퍼센트 이상인 것	3	0	
2804690000	기타	5.5	3	
2804701000	황린	5	0	
2804709000	기타	5.5	0	
2804800000	비소	5.5	0	
2804900000	셀렌	5.5	0	
2805110000	나트륨	5.5	0	
2805120000	칼슘	5.5	0	
2805190000	기타	5.5	0	
2805301000	세륨그룹	5.5	0	
2805302000	테르븀그룹	5.5	0	
2805303000	에르븀그룹	5.5	0	
2805304000	이트륨	5.5	0	
2805305000	스칸듐	5.5	0	
2805309000	기타	5.5	0	
2805400000	수은	5.5	0	
2806100000	염화수소(염산)	5.5	0	
2806200000	클로로황산	5.5	0	
2807001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5	0	
2807001090	기타	5.5	0	
2807002000	발연황산	5.5	0	
2808001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5	0	
2808001090	기타	5.5	0	
2808002000	황질산	5.5	0	
2809100000	오산화인	5.5	0	
2809201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5	0	
2809201090	기타	5.5	0	
2809202010	메타인산	5.5	0	
2809202020	피로인산	5.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711143000	부틸렌	5	0	
2711144000	부타디엔	5	0	
2711190000	기타	5	0	
2711210000	천연가스	3	0	
2711290000	기타	5	0	
2712101000	바셀린	8	0	
2712109000	기타	8	0	
2712200000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75 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	8	0	
2712901010	슬랙왁스 및 스케일왁스	8	0	
2712901020	마이크로크리스털린왁스	8	0	
2712901090	기타	8	0	
2712909010	몬탄왁스	8	0	
2712909020	토탄왁스	8	0	
2712909030	세레신왁스	8	0	
2712909040	합성 파라핀왁스	8	0	
2712909090	기타	8	0	
2713110000	하소하지 아니한 것	5	0	
2713120000	하소한 것	5	0	
2713200000	석유아스팔트	5	0	
2713900000	기타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재물	5	0	
2714100000	역청질혈암 또는 유모혈암 및 타르샌드	5	0	
2714901000	천연의 역청 및 아스팔트	5	0	
2714902000	아스팔타이트	5	0	
2714903000	아스팔트질의 암석	5	0	
2715001000	컷백	5	0	
2715002000	아스팔트, 역청, 피치 또는 타르의 에멀젼 또는 안정분산액	5	0	
2715003000	매스틱	5	0	
2715009000	기타	5	0	
2716000000	전기에너지	5	0	
2801100000	염소	5.5	0	
2801200000	요드	5.5	0	
2801301000	플루오르	5.5	0	
2801302000	브롬	5.5	0	
2802001000	승화황	5	0	
2802002000	침강황	5	0	
2802003000	콜로이드황	5	0	
2803001000	아세틸렌 블랙	5.5	0	
2803009010	카본 블랙	5.5	0	
2803009090	기타	5.5	3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809202090	기타	5.5	0	
2810001010	삼산화 이붕소	5.5	0	
2810001090	기타	5.5	0	
2810002000	오르토붕산	5.5	0	
2810003000	메타붕산	5.5	0	
2810009000	기타	5.5	3	
281111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5	0	
2811119000	기타	5.5	0	
2811191000	황화수소	5.5	0	
2811192000	브롬화수소산	5.5	0	
2811193000	술파민산	5.5	0	
2811194000	과염소산	5.5	0	
2811195000	염소산	5.5	0	
2811196000	하이포아인산	5.5	0	
2811197000	아인산	5.5	0	
2811198000	비산	5.5	0	
2811199010	하이드로겐 시아나이드(청산)	5.5	0	
2811199090	기타	5.5	0	
2811210000	이산화탄소	5.5	3	
2811221000	화이트카본	5.5	0	
2811229010	실리카겔	5.5	3	
2811229090	기타	5.5	3	
2811291000	일산화탄소	5.5	0	
2811292000	아산화질소	5.5	3	
2811293000	이산화질소	5.5	0	
2811294000	삼산화비소	5.5	0	
2811295000	오산화비소	5.5	0	
2811299000	기타	5.5	0	
2812101010	삼염화요드	5	0	
2812101020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	5	0	
2812101030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	5	0	
2812101040	아르세닉 트리클로라이드	5	0	
2812101050	설퍼 모노클로라이드	5	0	
2812101060	설퍼 디클로라이드	5	0	
2812101090	기타	5	0	
2812102010	티오닐 클로라이드	5	0	
2812102020	카보닐 디클로라이드(포스겐)	5	0	
2812102030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	5	0	
2812102090	기타	5	0	
2812901000	삼플루오르붕소	5.5	0	
2812902000	설퍼 헥사플루오라이드	5.5	0	
2812909000	기타	5.5	0	
2813100000	이황화탄소	5.5	0	
2813901020	오황화인	5.5	0	
2813901090	기타	5.5	0	
2813902010	오황화비소	5.5	0	
2813902090	기타	5.5	0	
2813903000	황화규소	5.5	0	
2813909000	기타	5.5	0	
2814100000	무수암모니아	1	0	
2814200000	암모니아수	2	0	
2815110000	고체의 것	5.5	0	
2815120000	수용액의 것(소다액 또는 액상소다)	8	0	
2815200000	수산화칼륨(가성칼륨)	5.5	0	
2815301000	과산화나트륨	5.5	0	
2815302000	과산화칼륨	5.5	0	
2816101000	수산화마그네슘	5.5	0	
2816102000	과산화마그네슘	5.5	0	
2816400000	스트론튬 또는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과산화물	5.5	0	
2817001000	산화아연	5.5	3	
2817002000	과산화아연	5.5	0	
2818101000	선별된 입상의 것	3	0	
2818109000	기타	3	0	
2818200000	산화알루미늄(인조커런덤은 제외한다)	1	0	
2818301000	알루미나겔	5.5	0	
2818309000	기타	5.5	0	
2819100000	삼산화크로뮴	5.5	0	
2819901010	산화제이크로뮴	5.5	0	
2819901090	기타	5.5	0	
2819902000	수산화크로뮴	5.5	0	
2820100000	이산화망간	5.5	3	
2820901000	일산화망간	5.5	0	
2820902000	삼산화제이망간	5.5	0	
2820909000	기타	5.5	0	
2821101000	산화철	5.5	3	
2821102000	수산화철	5.5	0	
2821200000	어드컬러	5.5	0	
2822001010	산화제이코발트	5.5	0	
2822001091	2차전지 제조용의 것	4	0	
2822001099	기타	5.5	0	
2822002010	수산화제일코발트	5.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822002090	기타	5.5	0	
2823001000	아나타스형	5.5	3	
2823009000	기타	5.5	3	
2824100000	일산화연(리타지, 메시코트)	5.5	0	
2824901000	연단 및 오렌지연	5.5	0	
2824909000	기타	5.5	0	
2825101000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5.5	0	
2825109010	히드라진	5.5	0	
2825109020	히드라진의 무기염	5.5	0	
2825109030	히드록실아민	5.5	0	
2825109041	히드록실 암모늄클로라이드(히드록실아민염산염)	5.5	0	
2825109049	기타	5.5	0	
2825201000	산화리튬	5.5	0	
2825202000	수산화리튬	5.5	0	
2825301000	오산화바나듐	2	0	
2825309000	기타	3	0	
2825401000	산화니켈	5.5	3	
2825402000	수산화니켈	5.5	0	
2825501000	산화동	5.5	0	
2825502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825502090	기타	5.5	0	
2825601000	산화게르마늄	5.5	0	
2825602000	이산화지르코늄	5.5	3	
2825701000	산화몰리브덴	3	0	
2825702000	수산화몰리브덴	5.5	0	
2825800000	산화안티몬	5.5	0	
2825901010	산화칼슘	5.5	0	
2825901020	산화텅스텐	1	0	
2825901030	산화석	5.5	0	
2825901090	기타	5.5	0	
2825902010	수산화칼슘	5.5	0	
2825902020	수산화망간	5.5	0	
2825902030	수산화텅스텐	5.5	0	
2825902040	수산화석	5.5	0	
2825902090	기타	5.5	0	
2825903010	과산화니켈	5.5	0	
2825903090	기타	5.5	0	
2825909000	기타	5.5	0	
2826120000	플루오르화알루미늄	5.5	0	
2826191000	플루오르화칼슘	5.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826193010	산성플루오르화칼륨	5.5	0	
2826193090	기타	5.5	0	
2826194000	플루오르화암모늄 또는 플루오르화나트륨	5.5	0	
2826195000	텅스텐 헥사플루오라이드(WF6)	5.5	0	
2826199000	기타	5.5	0	
2826300000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빙정석)	5.5	0	
2826901000	인조치올라이트	5.5	0	
2826902000	플루오르화규산칼슘	5.5	0	
2826903000	플루오르화붕산염	5.5	0	
2826904000	플루오르화인산염	5.5	0	
2826905000	플루오르화황산염	5.5	0	
2826906000	플루오르화규산나트륨 또는 플루오르화규산칼륨	5.5	0	
2826909000	기타	5.5	0	
2827100000	염화암모늄	5.5	0	
2827200000	염화칼슘	5.5	0	
2827310000	마그네슘 염화물	5.5	0	
2827320000	알루미늄 염화물	5.5	0	
2827350000	니켈 염화물	5.5	0	
2827391000	동 염화물	5.5	0	
2827399000	기타	5.5	0	
2827411000	산화염화동	5.5	0	
2827412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827412090	기타	5.5	0	
2827491000	산화염화물	5.5	0	
2827492000	수산화염화물	5.5	0	
2827511000	브롬화나트륨	5.5	0	
2827512000	브롬화칼륨	5.5	0	
2827591000	브롬화칼슘	5.5	0	
2827599000	기타	5.5	0	
2827601000	산화요드화물	5.5	3	
2827609010	요드화칼륨	5.5	0	
2827609090	기타	5.5	3	
2828100000	상관습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기타 하이포아염소산칼슘	5.5	0	
2828901010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5.5	0	
2828901020	하이포아염소산칼륨	5.5	0	
2828901090	기타	5.5	0	
2828902010	아염소산나트륨	5.5	0	
2828902020	아염소산알루미늄	5.5	0	
2828902090	기타	5.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828903000	하이포아브롬산염	5.5	0	
2829110000	염소산나트륨	5.5	0	
2829191000	염소산칼륨	5.5	0	
2829192000	염소산바륨	5.5	0	
2829199000	기타	5.5	0	
2829901010	과염소산나트륨	5.5	0	
2829901020	과염소산암모늄	5.5	0	
2829901090	기타	5.5	0	
2829902010	브롬산염	5.5	0	
2829902020	과브롬산염	5.5	0	
2829902030	요오드산염	5.5	0	
2829902040	과요오드산염	5.5	0	
2830101000	황화수소나트륨	5.5	0	
2830109000	기타	5.5	0	
2830901000	황화물	5.5	0	
2830902000	폴리황화물	5.5	0	
2831101000	아이티온산나트륨	5.5	0	
2831102000	슬폭실산나트륨(포름알데히드 술폭실산나트륨)	5.5	0	
2831901000	아이티온산염	5.5	0	
2831902000	술폭실산염	5.5	0	
2832101000	아황산수소나트륨	5.5	0	
2832109000	기타	5.5	0	
2832201000	아황산 암모늄	5.5	0	
2832202000	아황산 칼륨	5.5	0	
2832203000	아황산 칼슘	5.5	0	
2832209000	기타	5.5	0	
2832301000	티오황산 암모늄	5.5	0	
2832302000	티오황산 나트륨	5.5	0	
2832303000	티오황산 칼륨	5.5	0	
2832309000	기타	5.5	0	
2833110000	황산이나트륨	5.5	0	
2833191000	황산수소나트륨	5.5	0	
2833192000	이황산이나트륨	5.5	0	
2833199000	기타	5.5	0	
2833210000	황산마그네슘	5.5	0	
2833220000	황산알루미늄	5.5	0	
2833240000	황산니켈	5.5	0	
283325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833259000	기타	5.5	0	
2833270000	황산바륨	5.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833291000	황산철	5.5	0	
2833299000	기타	5.5	0	
2833300000	명반	5.5	0	
2833401000	과황산암모늄	5.5	0	
2833402000	과황산나트륨	5.5	0	
2833403000	과황산칼슘	5.5	0	
2833409000	기타	5.5	0	
2834101000	아질산나트륨	5.5	0	
2834109000	기타	5.5	0	
2834210000	질산칼륨	5.5	0	
2834291000	질산바륨	5.5	0	
2834299000	기타	5.5	0	
2835101010	하이포아인산나트륨	5.5	0	
2835101020	하이포아인산칼슘	5.5	0	
2835101090	기타	5.5	0	
2835102000	아인산염	5.5	0	
2835221000	인산일나트륨	5.5	0	
2835222000	인산이나트륨	5.5	0	
2835240000	인산칼륨	5.5	0	
2835250000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5.5	0	
2835260000	기타 인산칼슘	5.5	0	
2835291000	인산알루미늄	5.5	0	
2835299000	기타 인산	5.5	0	
2835310000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5.5	3	
2835391000	메타인산나트륨	5.5	3	
2835392000	피로인산나트륨	5.5	3	
2835399000	기타	5.5	3	
2836200000	탄산이나트륨	4	0	
2836300000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5.5	3	
2836400000	탄산칼륨	5.5	0	
2836500000	탄산칼슘	5.5	0	
2836600000	탄산바륨	5.5	0	
2836910000	탄산리튬	5.5	0	
2836920000	탄산스트론튬	5.5	0	
2836991010	탄산마그네슘	5.5	0	
2836991020	상관습상의 탄산암모늄과 기타 탄산암모늄	5.5	0	
2836991090	기타	5.5	0	
2836992000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5.5	0	
2837111000	시안화나트륨	5.5	0	
2837112000	산화시안화나트륨	5.5	0	
2837191010	시안화칼륨	5.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837191020	시안화동	5.5	0	
2837191030	시안화아연	5.5	0	
2837191090	기타	5.5	0	
2837192000	산화시안화물	5.5	0	
2837201000	페로시안화물	5.5	0	
2837202000	페리시안화물	5.5	0	
2837209000	기타	5.5	0	
2839110000	메타규산나트륨	5.5	0	
2839190000	기타	5.5	3	
2839901000	규산지르코늄	5.5	3	
2839902000	규산바륨	5.5	0	
2839909000	기타	5.5	3	
2840110000	무수물	5	0	
2840190000	기타	5	0	
2840200000	기타 붕산염	5	3	
2840300000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5	0	
2841300000	중크롬산나트륨	5.5	0	
2841501000	크롬산칼륨	5.5	0	
2841509000	기타	5.5	0	
2841610000	과망간산칼륨	5.5	0	
2841691000	아망간산염	5.5	0	
2841692000	망간산염	5.5	0	
2841693000	과망간산염	5.5	0	
2841700000	몰리브덴산염	5.5	0	
2841800000	텅스텐산염(올프라메이트)	5	3	
2841901000	주석산염	5.5	0	
2841902010	티탄산바륨	5.5	0	
2841902020	티탄산스트론튬	5.5	0	
2841902030	티탄산납	5.5	0	
2841902090	기타	5.5	0	
2841903000	안티몬산염	5.5	0	
2841904000	철산염 및 아철산염	5.5	0	
2841905000	바나듐산염	5.5	0	
2841906000	비스무트산염	5.5	0	
2841909000	기타	5.5	0	
2842101000	알루미노실리케이트	6.5	0	
2842109000	기타	5.5	0	
2842901000	셀렌산염	5.5	0	
2842903000	황을 함유하는 겁염 또는 착염	5.5	0	
2842905000	셀렌의 겁염 또는 착염	5.5	0	
2842909000	기타	5.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843101000	콜로이드 은	5.5	0	
2843102000	콜로이드 금	5.5	0	
2843103000	콜로이드 백금	5.5	0	
2843109000	기타	5.5	0	
284321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5	3	
2843219000	기타	5.5	0	
284329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5	0	
2843299000	기타	5.5	0	
2843301000	반도체 제조용 금청산칼륨	5.5	0	
2843309000	기타	5.5	0	
2843901000	아말감	5.5	0	
2843909010	백금 화합물	5.5	0	
2843909090	기타	5.5	0	
2844101000	천연우라늄	0	0	
2844102000	분산물(천연우라늄 또는 천연우라늄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0	0	
2844109000	기타	0	0	
2844201000	우라늄 235 로 농축된 우라늄	0	0	
2844202000	분산물(우라늄 235 를 농축한 우라늄, 플루토늄 또는 이들 물품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0	0	
2844209000	기타	0	0	
2844301000	분산물(우라늄 235 를 열화시킨 우라늄, 토륨 또는 이들 물품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0	0	
2844309000	기타	0	0	
2844401000	방사성원소	0	0	
2844402000	방사성동위원소	0	0	
2844403000	분산물(방사성원소,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0	0	
2844409000	기타	0	0	
2844500000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된 연료요소(카트리지)	0	0	
2845100000	중수(산화 중수소)	0	0	
2845901000	중수소	0	0	
2845902000	탄소의 동위원소	0	0	
2845909000	기타	0	0	
2846100000	세륨화합물	5	0	
2846901000	산화이트륨	5	0	
2846909000	기타	5	3	
2847002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5	0	
2847009000	기타	5.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901102000	헥산	0	0	
2901103000	헵탄	0	0	
2901109000	기타	0	0	
2901210000	에틸렌	0	0	
2901220000	프로펜(프로필렌)	0	0	
2901230000	부텐(부틸렌) 및 이들의 이성체	0	0	
2901241000	1,3-부타디엔	0	0	
2901242000	이소프렌	0	0	
2901291000	헥센	0	0	
2901292000	옥텐	0	0	
2901299000	기타	0	0	
2902110000	시클로헥산	5	0	
2902191000	에틸리덴 노르보넨	5	0	
2902199000	기타	5	0	
2902200000	벤젠	3	0	
2902300000	톨루엔	3	0	
2902410000	오르토-크실렌	5	0	
2902420000	메타-크실렌	5	0	
2902430000	파라-크실렌	3	0	
2902440000	혼합크실렌이성체	3	0	
2902500000	스티렌	0	0	
2902600000	에틸벤젠	5	0	
2902700000	큐멘	3	0	
2902901000	나프탈렌	0	0	
2902902000	메틸나프탈렌	0	0	
2902903000	메틸스티렌	0	0	
2902909000	기타	0	0	
2903111000	염화메탄(염화메틸)	5.5	0	
2903112000	염화에탄(염화에틸)	5.5	0	
2903120000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5.5	0	
2903130000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5.5	0	
2903140000	사염화탄소	5.5	0	
2903150000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5	0	
2903191000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클로로포름)	5.5	0	
2903199000	기타	5.5	0	
2903210000	염화비닐(염화에틸렌)	5.5	0	
2903220000	삼염화에틸렌	5.5	0	
2903230000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5.5	0	
2903290000	기타	5.5	0	
2903310000	이브롬화에틸렌(ISO)(1,2-디브로모에탄)	5.5	0	
2903391000	브로모메탄(메틸 브로마이드)	5.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848001000	인동(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5	0	
2848002000	인화알루미늄	5.5	0	
2848009000	기타	5.5	3	
2849100000	탄화칼슘	5.5	0	
2849200000	탄화규소	5	3	
2849901000	복탄화물	5.5	0	
2849909010	탄화텅스텐	5.5	0	
2849909090	기타	5.5	0	
2850001000	수소화물	5.5	3	
2850002000	질화물	5.5	0	
2850003000	아지드화물	5.5	0	
2850004000	규화물	5.5	0	
2850005000	붕화물	5.5	0	
2852001000	소호 제 2825.90 호, 제 2827.39 호, 제 2827.49 호, 제 2827.60 호, 제 2830.90 호, 제 2833.29 호, 제 2834.29 호, 제 2835.39 호, 제 2837.19 호, 제 2837.20 호, 제 2841.50 호, 제 2842.10 호, 제 2842.90 호, 제 2843.90 호, 제 2848.00 호, 제 2849.90 호, 제 2850.00 호 또는 제 2853.00 호의 것	5.5	0	
2852002000	소호 제 2918.11 호, 제 2931.00 호, 제 2932.99 호, 제 2934.99.9090 호, 제 3201.90.2000 호, 제 3201.90.4000 호, 제 3206.50 호, 제 3707.90 호, 제 3822.00.1091 호 또는 제 3822.00.2091 호의 것	6.5	0	
2852003000	소호 제 2934.99.2000 호, 제 3822.00.1092 호 또는 제 3822.00.2092 호의 것	6.5	0	
2852004000	소호 제 3502.90 호 또는 제 3504.00 호의 것	8	0	
2852005000	소호 제 3822.00.101 호, 제 3822.00.102 호, 제 3822.00.1093 호, 제 3822.00.201 호, 제 3822.00.202 호 또는 제 3822.00.2093 호의 것	0	0	
2852006000	소호 제 3822.00.1099 호 또는 제 3822.00.2099 호의 것	8	0	
2853001000	증류수 또는 전도도수 및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	5.5	0	
2853002000	압축공기	5.5	0	
2853003000	아말감	5.5	0	
2853004010	시아노겐 클로라이드	5.5	0	
2853004090	기타	5.5	0	
2853005000	알칼리 아미드	5.5	0	
2853009000	기타	5.5	0	
2901101000	부탄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03491390	기타	5.5	0	
2903492000	불소 및 브롬만을 가지는 할로겐화 메탄, 에탄 또는 프로판의 유도체	5.5	0	
2903499000	기타	5.5	0	
29035100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한다]	5.5	0	
2903520000	앨드린(ISO), 클로르덴(ISO) 및 헵타클로르(ISO)	5.5	0	
2903590000	기타	5.5	0	
2903611000	클로로벤젠	5.5	0	
2903619000	기타	5.5	0	
2903621000	헥사클로로벤젠(ISO)	5.5	0	
2903622000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5.5	0	
2903691000	염화벤질	5.5	0	
2903692010	1,2,4-트리클로로벤젠	5.5	0	
2903692090	기타	5.5	0	
2903693000	벤조트리클로라이드	5.5	0	
2903699000	기타	5.5	0	
2904101000	벤젠 술폰산	5.5	0	
2904109000	기타	5.5	0	
2904201000	니트로톨루엔	5.5	0	
2904209010	니트로벤젠	5.5	0	
2904209020	4-니트로비페닐과 그 염	5.5	0	
2904209090	기타	5.5	0	
2904901000	2,4-디니트로클로로벤젠	5.5	0	
2904902000	파라-니트로클로로벤젠	5.5	0	
2904903000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클로로피크린)	5.5	0	
2904909000	기타	5.5	0	
2905110000	메탄올(메틸알코올)	2	0	
2905121000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	5.5	0	
2905122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5	0	
2905122090	기타	5.5	0	
2905130000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5	0	
2905140000	기타 부탄올	5.5	0	
2905161000	2-에틸헥실알코올	5.5	0	
2905169000	기타	5.5	0	
2905171000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5.5	0	
2905172000	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5.5	0	
2905173000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5.5	0	
2905191000	헵틸알코올	5.5	0	
2905192000	노닐알코올	5.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03392000	브로모에탄(1,2-디브로모에탄은 제외한다)	5.5	0	
2903393000	요드메탄	5.5	0	
2903394000	헥사플루오르에탄(CFC-116)	5.5	0	
2903395000	1,1-디플루오르에탄(HFC-152a)	5.5	0	
2903396000	1,1,1,2-테트라 플루오르에탄(HFC-134a)	5.5	0	
2903397000	1,1,3,3,3-펜타플루오르-2-(트리플루오르메틸)-1-프로펜	5.5	0	
2903399000	기타	5.5	0	
2903410000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5.5	0	
2903420000	디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5.5	0	
2903430000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5.5	0	
2903441000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CFC-114)	5.5	0	
2903442000	클로로펜타플루오르에탄(CFC-115)	5.5	0	
2903451010	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CFC-13)	5.5	0	
2903451090	기타	5.5	0	
2903452010	펜타클로로플루오르에탄(CFC-111)	5.5	0	
2903452020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CFC-112)	5.5	0	
2903452090	기타	5.5	0	
2903453010	헵타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CFC-211)	5.5	0	
2903453020	헥사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CFC-212)	5.5	0	
2903453030	펜타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CFC-213)	5.5	0	
2903453040	테트라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CFC-214)	5.5	0	
2903453050	트리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CFC-215)	5.5	0	
2903453060	디클로로헥사플루오르프로판(CFC-216)	5.5	0	
2903453070	클로로헵타플루오르프로판(CFC-217)	5.5	0	
2903453090	기타	5.5	0	
29034610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하론-1211)	5.5	0	
2903462000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하론-1301)	5.5	0	
2903463000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하론-2402)	5.5	0	
2903471000	하이드로브로모플루오르카본	5.5	0	
2903479000	기타	5.5	0	
2903491110	디클로로플루오르메탄(HCFC-21)	5.5	0	
2903491120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HCFC-22)	5.5	0	
2903491130	클로로플루오르메탄(HCFC-31)	5.5	0	
2903491190	기타	5.5	0	
2903491210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HCFC-123)	5.5	0	
2903491220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HCFC-124)	5.5	0	
2903491230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HCFC-141)	5.5	0	
2903491240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HCFC-142)	5.5	0	
2903491290	기타	5.5	0	
2903491310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HCFC-225)	5.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07132000	노닐페놀	5	0	
2907139000	기타	5.5	0	
2907151000	나프톨	5.5	0	
2907152000	나프톨의 염	5.5	0	
2907191000	티몰	5.5	0	
2907192000	크실레놀과 그들의 염	5.5	0	
2907199000	기타	5.5	0	
2907211000	레소르시놀	5.5	0	
2907212000	레소르시놀의 염	5.5	0	
2907221000	히드로퀴논	5.5	0	
2907222000	히드로퀴논의 염	5.5	0	
2907231000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5.5	0	
2907232000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의 염	5.5	0	
2907291000	카테콜	5.5	0	
2907299000	기타	5.5	0	
2908110000	펜타클로로페놀(ISO)	5	0	
2908191000	클로로페놀(펜타클로로페놀은 제외한다)	5	0	
2908192000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에이	5	0	
2908193000	트리브로모페놀	5	0	
2908199000	기타	5	0	
2908910000	디노셉(ISO)과 그 염	5.5	0	
2908991000	나프톨술폰산과 그들의 염	5.5	0	
2908992000	페놀술폰산	5.5	0	
2908993000	니트로화유도체 및 그들의 염	5.5	0	
2908994000	니트로소화유도체 및 그들의 염	5.5	0	
2908999000	기타	5.5	0	
2909110000	디에틸에테르	5.5	0	
2909191000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5.5	0	
2909192000	메틸터샤리 부틸에테르	5.5	0	
2909199000	기타	5.5	0	
2909201000	시네올	5.5	0	
2909209000	기타	5.5	0	
2909301000	아니솔	5.5	0	
2909302000	아네톨	5.5	0	
2909303000	디페닐 에테르	5.5	0	
2909304000	앰브렛 머스크	5.5	0	
2909305000	데카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	5.5	0	
290930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09309090	기타	5.5	0	
2909410000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5.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05193000	이소노닐알코올	3	0	
2905194000	펜탄올(아밀알코올)과 그 이성체	5.5	0	
2905199010	3,3-디메틸부탄-2-올(피나코릴 알코올)	5	0	
2905199020	2-프로필-헵틸 알코올	5	0	
2905199030	이소데실 알코올	3	0	
2905199090	기타	5	0	
2905221000	게라니올, 시트로네롤, 리날롤, 로디놀 및 네롤	5	0	
2905229000	기타	5	0	
2905290000	기타	5	0	
29053100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3	0	
2905320000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5.5	0	
2905391000	1,4-부탄디올	5.5	0	
2905392000	네오펜틸 글리콜	5.5	0	
2905399000	기타	5.5	0	
2905410000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5.5	0	
2905420000	펜타에리트리톨	5.5	0	
2905430000	만니톨	8	7	
2905440000	D-글루시톨(소르비톨)	8	7	
2905450000	글리세롤	8	5	
2905490000	기타	5.5	0	
2905510000	에스클로비놀(INN)	5.5	0	
2905590000	기타	5.5	0	
2906110000	멘톨	5.5	0	
2906120000	시클로헥산올, 메틸시클로헥산올 및 디메틸시클로헥산올	5.5	0	
2906131000	스테롤	5.5	0	
2906132000	이노시톨	5.5	0	
2906191000	보르네올	5.5	0	
2906192000	테르피네올	5.5	0	
2906199000	기타	5.5	0	
2906210000	벤질알코올	5.5	0	
2906291000	페닐에틸알코올	5.5	0	
2906292000	페닐프로필알코올	5.5	0	
2906293000	신나밀알코올	5.5	0	
2906299000	기타	5.5	0	
2907111000	페놀	5.5	0	
2907112000	페놀의 염	5.5	0	
2907121000	크레졸	5.5	0	
2907122000	크레졸의 염	5.5	0	
2907131000	옥틸페놀	5.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09430000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또는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5.5	0	
2909441000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메틸에테르 또는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메틸 에테르	5.5	0	
2909449000	기타	5.5	0	
2909491000	트리에틸렌 글리콜	5.5	0	
2909499000	기타	5.5	0	
2909501000	오이게놀	5.5	0	
2909502000	이소오이게놀	5.5	0	
2909503000	에테르알코올페놀	5.5	0	
2909509000	기타	5.5	3	
2909601000	과산화알코올	5.5	0	
2909602000	디쿠밀퍼록사이드	5.5	0	
2909603000	메틸에틸케톤퍼록사이드	5.5	0	
2909609000	기타	5.5	3	
2910100000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5	0	
2910200000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5.5	0	
2910300000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5.5	0	
2910400000	디엘드린(ISO, INN)	5.5	0	
2910900000	기타	5.5	0	
2911001010	아세탈	5.5	0	
2911001020	헤미아세탈	5.5	0	
2911009000	기타	5.5	0	
2912110000	메탄알(포름알데히드)	5.5	0	
2912120000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5.5	0	
2912191000	시트로넬알데히드	5.5	0	
2912192000	시트랄	5.5	0	
2912193000	부탄알(부티르알데히드, 노르말 이성체)	5.5	0	
2912199000	기타	5.5	0	
2912210000	벤즈알데히드	5.5	3	
2912292000	페닐아세트알데히드	5.5	0	
2912293000	신남알데히드	5.5	0	
2912294000	알파아밀신남알데히드	5.5	0	
2912295000	시클라멘알데히드	5.5	0	
2912299000	기타	5.5	3	
2912301000	히드록시시트로넬알데히드	5.5	0	
2912309000	기타	5.5	0	
2912410000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5	0	
2912420000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5.5	0	
2912491000	3,4,5-트리메톡시벤즈알데히드	5.5	0	
2912499000	기타	5.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12501000	트리옥산	5.5	0	
2912502000	파라알데히드	5.5	0	
2912503000	메타알데히드	5.5	0	
2912509000	기타	5.5	0	
2912600000	파라포름알데히드	5.5	0	
2913000000	제 2912 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5.5	0	
2914110000	아세톤	5.5	0	
2914120000	부탄온(메틸에틸케톤)	3	0	
2914130000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5.5	0	
2914191000	3,3-디메틸-2-부탄온(피나콜론)	5.5	0	
2914199000	기타	5.5	0	
2914210000	장뇌	5	0	
2914221000	시클로헥사논	5	0	
2914222000	메틸시클로헥사논	5	0	
2914231000	이오논	5	0	
2914232000	메틸이오논	5	0	
2914291000	자스몬	5	0	
2914299000	기타	5	0	
2914310000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5.5	3	
2914390000	기타	5.5	0	
2914401000	디아세톤 알코올(4-히드록시-4-메틸펜탄-2-온)	5.5	0	
2914409000	기타	5.5	0	
2914501000	케톤-페놀	5.5	0	
2914509000	기타	5.5	0	
2914610000	안트라퀴논	5.5	0	
2914691000	안트라퀴논의 유도체	5.5	0	
2914699010	퀴논-알코올, 퀴논페놀과 퀴논-알데히드	5.5	0	
2914699090	기타	5.5	0	
2914701000	케톤 머스크	5	0	
291470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14709090	기타	5	0	
2915110000	포름산	5.5	0	
2915121000	포름산 칼슘	5.5	0	
2915122000	포름산 암모늄	5.5	0	
2915129000	기타	5.5	0	
2915131000	포름산 메틸	5.5	0	
2915132000	2-에틸헥실클로로포메이트	5.5	0	
2915139000	기타	5.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15210000	초산	5.5	0	
2915240000	무수초산	5.5	0	
2915291000	초산칼슘	5.5	0	
2915292000	초산나트륨	5.5	0	
2915293000	초산코발트	5.5	0	
2915299000	기타	5.5	0	
2915310000	초산에틸	5.5	0	
2915320000	초산비닐	5.5	0	
291533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5	0	
2915339000	기타	5.5	0	
2915360000	초산디노셉(ISO)	5.5	0	
2915391000	초산아밀	5.5	0	
2915392000	초산이소아밀	5.5	0	
2915393000	초산메틸	5.5	0	
2915394000	초산이소부틸	5.5	0	
2915395000	초산 2-에톡시에틸	5.5	0	
2915399000	기타	5.5	0	
2915401000	모노클로로 아세트산	5.5	0	
2915409000	기타	5.5	0	
2915500000	프로피온산, 그 염 및 에스테르	5.5	5	
2915600000	부탄산, 펜탄산,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5.5	0	
2915701000	팔미트산, 그 염 및 에스테르	5.5	0	
2915702010	스테아르산	5.5	3	
2915702020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5.5	5	
2915702030	스테아르산 연	5.5	0	
2915702040	스테아르산 아연	5.5	0	
2915702050	스테아르산 바륨	5.5	0	
2915702060	스테아르산 카드뮴	5.5	0	
2915702070	스테아르산 칼슘	5.5	5	
2915702080	스테아르산 부틸	5.5	0	
2915702090	기타	5.5	3	
2915901000	네오데카노일 클로라이드와 피발로일클로라이드	5.5	0	
2915909010	2-에틸헥소산	5.5	0	
2915909090	기타	5.5	0	
2916111000	아크릴산	6.5	0	
2916119000	기타	6.5	5	
2916121000	아크릴산에틸	6.5	0	
2916122000	아크릴산메틸	6.5	0	
2916123000	아크릴산부틸	6.5	0	
2916124000	아크릴산 2-에틸헥실	6.5	0	
2916129000	기타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16131000	메타아크릴산	6.5	0	
2916139000	기타	6.5	0	
2916141000	메타아크릴산메틸	6.5	0	
2916149000	기타	6.5	5	
2916151000	올레산, 그 염 및 에스테르	6.5	3	
2916152000	리놀레산, 그 염 및 에스테르	6.5	3	
2916153000	리놀렌산, 그 염 및 에스테르	6.5	0	
2916190000	기타	6.5	0	
2916201000	시클로 헥산카르복시산	6.5	0	
2916202000	시클로 펜테닐 초산	6.5	0	
291620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16209090	기타	6.5	0	
2916311000	벤조산	6.5	0	
2916312000	벤조산나트륨	6.5	3	
2916313000	벤조산벤질	6.5	0	
291631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16319090	기타	6.5	0	
2916321000	과산화벤조일	6.5	0	
2916322000	염화벤조일	6.5	0	
2916341000	페닐아세트산	6.5	0	
2916342000	페닐아세트산의 염	6.5	0	
2916351000	페닐아세트산에틸	6.5	0	
2916352000	페닐아세트산이소부틸	6.5	0	
2916353000	페닐아세트산이소아밀	6.5	0	
2916359000	기타	6.5	0	
2916360000	비나파크릴(ISO)	6.5	0	
2916391000	계피산	6.5	0	
29163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16399090	기타	6.5	5	
2917111000	옥살산	6.5	0	
2917112000	옥살산의 염	6.5	0	
2917113000	옥살산의 에스테르	6.5	0	
2917121000	아디프산	6.5	0	
2917122000	아디프산의 염	6.5	0	
2917123010	아디프산 디옥틸	6.5	0	
2917123090	기타	6.5	0	
2917131000	아젤라산, 그 염 및 에스테르	6.5	0	
2917132000	세바스산, 그 염 및 에스테르	6.5	3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17140000	무수말레산	6.5	0	
2917191000	말레산	6.5	0	
2917192000	숙신산	6.5	0	
2917193000	숙신산 나트륨	6.5	0	
2917194000	말론산 디에틸	6.5	0	
2917195000	말론산 디이소프로필	6.5	0	
2917199000	기타	6.5	0	
2917200000	포화지환식, 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그들의 무수물, 할로겐화물, 과산화물, 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6.5	0	
2917321000	오르토프탈산 디-2-에틸헥실	6.5	0	
2917329000	기타	6.5	0	
2917331000	오르토프탈산 디노닐	6.5	0	
2917332000	오르토프탈산 디데실	6.5	0	
2917341000	오르토프탈산 디헵틸	6.5	0	
2917342000	오르토프탈산 디이소데실	6.5	0	
2917343000	오르토프탈산 디부틸	6.5	0	
2917349000	기타	6.5	0	
2917350000	무수프탈산	6.5	0	
2917361000	테레프탈산	3	0	
2917369000	기타	6.5	0	
2917370000	테레프탈산디메틸	6.5	0	
2917391000	이소프탈산	6.5	0	
2917392000	트리옥틸트리메리테이트(T.O.T.M)	6.5	0	
2917393000	무수트리멜리트산	6.5	0	
2917399000	기타	6.5	0	
2918111000	락트산	6.5	0	
2918112000	락트산의 염	6.5	0	
2918113000	락트산의 에스테르	6.5	0	
2918120000	타르타르산	6.5	5	
2918131000	타르타르산의 염	6.5	0	
2918132000	타르타르산의 에스테르	6.5	0	
2918140000	시트르산	6.5	3	
2918151010	시트르산 칼슘	6.5	3	
2918151090	기타	6.5	5	
2918152000	시트르산의 에스테르	6.5	0	
2918161000	글루콘산	6.5	0	
2918162000	글루콘산의 염	6.5	0	
2918163000	글루콘산의 에스테르	6.5	5	
2918180000	클로로벤질레이트(ISO)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18191010	말산	6.5	0	
2918191090	기타	6.5	0	
2918192010	말산의 염	6.5	0	
2918192090	기타	6.5	0	
2918193010	말산의 에스테르	6.5	0	
2918193020	메틸벤질레이트	6.5	0	
2918193090	기타	6.5	0	
2918194000	2,2-디페닐-2-히드록시아세트산(벤질산)	6.5	0	
2918199000	기타	6.5	5	
2918211000	살리실산	6.5	0	
2918212010	살리실산 나트륨	6.5	0	
2918212090	기타	6.5	3	
29182210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6.5	0	
2918222000	오르토-아세틸살리산의 염	6.5	0	
29182230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의 에스테르	6.5	0	
2918231010	살리실산 메틸	6.5	0	
2918231020	살리실산 에틸	6.5	0	
2918231090	기타	6.5	0	
2918232000	기타 살리실산에스테르의 염	6.5	0	
2918291000	베타-옥시나프토산과 그 염	6.5	0	
2918299010	갈산	6.5	0	
2918299020	파라히드록시 나프토산	6.5	0	
2918299030	파라히드록시 벤조산	6.5	0	
2918299040	갈산의 염과 에스테르	6.5	0	
2918299090	기타	6.5	0	
291830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18309000	기타	6.5	0	
2918910000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 염 및 에스테르	6.5	5	
291899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18999000	기타	6.5	0	
291910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6.5	5	
291990101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19901019	기타	6.5	0	
2919901020	글리세로인산	6.5	0	
2919901090	기타	6.5	0	
2919902000	인산에스테르의 염	6.5	0	
2919909000	기타	6.5	3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2011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20119000	기타	6.5	0	
292019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20199010	0,0-디메틸-0-(3-메틸-4-니트로페닐)티오포스페이트	6.5	0	
2920199090	기타	6.5	0	
2920901010	황산디메틸	6.5	0	
2920901020	황산디에틸	6.5	0	
2920901090	기타	6.5	0	
2920902000	아질산에스테르 및 질산에스테르의 것	6.5	0	
2920903000	탄산에스테르의 것	6.5	0	
2920904010	디메틸 포스파이트	6.5	0	
2920904020	디에틸 포스파이트	6.5	0	
2920904030	트리메틸 포스파이트	6.5	0	
2920904040	트리에틸 포스파이트	6.5	0	
292090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20909090	기타	6.5	0	
2921111010	메틸아민	6.5	0	
2921111020	메틸아민의 염	6.5	0	
2921112010	디메틸아민	6.5	0	
2921112020	디메틸아민의 염	6.5	0	
2921113010	트리메틸아민	6.5	0	
2921113020	트리메틸아민의 염	6.5	3	
2921191000	디메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6.5	0	
2921192000	디에틸아민과 그 염	6.5	0	
2921199010	디메틸라우릴아민	6.5	0	
2921199020	클로르메틴(INN)[비스(2-클로로에틸)메틸아민]	6.5	0	
2921199030	비스(2-클로로에틸)에틸아민	6.5	0	
2921199040	트리클로르메틴(INN)[트리스(2-클로로에틸)아민]	6.5	0	
2921199050	디-이소프로필아민	6.5	0	
2921199060	엔,엔-디이소프로필-베타-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6.5	0	
292119907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2-클로로에틸아민과 그들의 수소화된 염	6.5	0	
2921199090	기타	6.5	5	
2921211000	에틸렌디아민	6.5	0	
2921212000	에틸렌디아민의 염	6.5	0	
2921221000	헥사메틸렌디아민	6.5	0	
2921222000	헥사메틸렌디아민아디페이트	6.5	0	
2921229000	기타	6.5	0	
2921291000	디에틸렌 트리아민	5	0	
2921292000	트리에틸렌 테트라아민	5	0	
2921299000	기타	5	0	
2921301000	시클로 헥실아민	6.5	0	
2921309000	기타	6.5	0	
2921411000	아닐린	6.5	0	
2921412000	아닐린의 염	6.5	0	
2921421000	아닐린의 니트로할로겐화 유도체	6.5	0	
2921422000	2,4,5-트리클로로아닐린	6.5	0	
292142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21429090	기타	6.5	0	
2921431000	파라-톨루이딘-메타-술폰산과 그 염	6.5	0	
2921432000	2-클로로-파라-톨루이딘-5-술폰산과 그 염	6.5	0	
2921433000	3-아미노-6-클로로톨루엔-4-술폰산과 그 염	6.5	0	
2921439010	톨루이딘	6.5	0	
292143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21439099	기타	6.5	0	
2921441000	디페닐아민	6.5	0	
2921449000	기타	6.5	0	
2921451000	1-나프틸아민-4-술폰산과 그 염	6.5	0	
2921459010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6.5	0	
2921459020	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6.5	0	
2921459030	2-나프틸아민-3,6,8-트리술폰산과 그 염	5	0	
2921459090	기타	6.5	0	
2921460000	암페타민(INN), 벤즈페타민(INN), 덱스암페타민(INN), 에틸암페타민(INN), 펜캄파민(INN), 레페타민(INN), 레브암페타민(INN), 메페노렉스(INN) 및 펜터민(INN), 그들의 염	6.5	0	
292149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21499000	기타	6.5	5	
2921511000	엔-페닐-엔-이소프로필-파라-페닐렌디아민	6.5	0	
2921512000	엔-(1,3-디메틸 부틸)-엔-페닐-파라-페닐렌디아민	6.5	3	
2921519010	오르토-페닐렌 디아민	6.5	0	
2921519020	메타-페닐렌 디아민	6.5	0	
2921519030	파라-페닐렌 디아민	6.5	0	
2921519040	디아미노톨루엔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21519090	기타	6.5	3	
2921591000	3,3-디클로로벤지딘술폰산염	6.5	0	
2921599010	벤지딘	6.5	0	
2921599020	벤지딘 디히드로 클로라이드	6.5	0	
2921599030	4,4′디아미노스틸벤-2,2′-디술폰산과 그 염	6.5	0	
2921599040	벤지딘의 염(벤지딘디히드로클로라이드의 것은 제외한다)	6.5	0	
2921599050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6.5	0	
2921599090	기타	6.5	0	
2922111000	모노에탄올아민	6.5	0	
2922112000	모노에탄올아민의 염	6.5	0	
2922121000	디에탄올아민	6.5	0	
2922122000	디에탄올아민의 염	6.5	0	
2922131000	트리에탄올아민	3	0	
2922132000	트리에탄올아민의 염	6.5	0	
2922140000	덱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6.5	0	
2922191000	아릴에탄올아민	6.5	0	
2922193010	엔,엔-디메틸-2-아미노에탄올과 그의 수소화된 염	6.5	0	
2922193020	엔,엔-디에틸-2-아미노에탄올과 그의 수소화된 염	6.5	0	
2922193090	기타	6.5	0	
2922194000	에틸디에탄올아민	6.5	0	
2922195000	메틸디에탄올아민	6.5	0	
2922196000	디에틸아미노에탄올	6.5	0	
2922199000	기타	6.5	0	
2922211000	7-아미노-1-나프톨-3-술폰산(감마 에시드)과 그 염	6.5	0	
2922212000	8-아미노-1-나프톨-3, 6-디술폰산(에이치 에시드)과 그 염	3	0	
2922213000	2-아미노-5-나프톨-7-디술폰산(제이 에시드)과 그 염	6.5	0	
2922219000	기타	6.5	0	
2922291000	파라-아미노페놀	6.5	0	
2922299010	메타-아미노페놀	6.5	0	
2922299020	오르토-아미노페놀	6.5	0	
2922299030	아미노 크레졸	6.5	0	
2922299040	페네티딘과 그들의 염	6.5	0	
2922299090	기타	6.5	0	
2922310000	암페프라몬(INN), 메타돈(INN) 및 노르메타돈(INN), 그들의 염	6.5	0	
2922392000	아미노 안트라퀴논과 그들의 염	6.5	0	
2922393000	아미노 안트라퀴논의 유도체	6.5	0	
2922399000	기타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22411000	리신	6.5	0	
2922412000	리신의 에스테르	6.5	0	
2922413000	리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	6.5	5	
2922421000	글루탐산	5	0	
2922422000	글루탐산 나트륨	6.5	0	
2922423000	기타 글루탐산의 염	6.5	0	
2922431000	안트라닐산	6.5	0	
2922439000	안트라닐산의 염	6.5	0	
2922440000	틸리딘(INN)과 그 염	6.5	0	
2922491000	글리신	6.5	5	
2922492000	알라닌	6.5	0	
2922493000	류우신	6.5	0	
2922494000	바린	6.5	0	
2922495000	아스파르트산	6.5	5	
2922496000	페닐글리신	6.5	0	
2922497000	에틸파라아미노 벤조에이트	6.5	0	
2922499000	기타	6.5	0	
2922501000	세린	6.5	0	
2922502000	파라-아미노살리실산과 그 염	6.5	0	
2922503000	1-파라-니트로 페놀-2-아미노-1,3-프로판디올	6.5	0	
2922504000	디알파히드록시페닐글리신	6.5	0	
292250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22509090	기타	6.5	0	
2923101000	콜린	6.5	0	
2923102000	콜린의 염	6.5	0	
2923201000	레시틴	6.5	0	
2923202000	기타 포스포아미노리피드	6.5	0	
2923900000	기타	6.5	3	
2924110000	메프로바메이트(INN)	6.5	0	
2924121000	플루오르아세트아미드(ISO)	6.5	0	
2924122000	모노크로토포스(ISO)	6.5	0	
2924123000	포스파미돈(ISO)	6.5	0	
2924191000	디메틸포름아미드	6.5	0	
2924192000	디메틸아세트아미드	6.5	0	
29241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24199090	기타	6.5	0	
292421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24219000	기타	6.5	3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24230000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 안트라닐산) 및 그 염	6.5	0	
2924240000	에티나메이트(INN)	6.5	0	
2924291010	아미노아세트아닐리드 및 그 유도체	6.5	0	
2924291020	아세트아미노펜	6.5	5	
2924291090	기타	6.5	0	
2924292000	아세토아세트아닐리드 및 그 유도체	5	0	
2924299010	염산리도카인	6.5	0	
2924299091	이오프로마이드, 이오파미돌 및 이오메프롤	0	0	
2924299092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24299099	기타	6.5	3	
2925111000	사카린	6.5	0	
2925112000	사카린의 염	6.5	0	
2925120000	글루테티미드(INN)	6.5	0	
2925191000	프탈아미드	6.5	0	
29251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25199090	기타	6.5	0	
2925210000	클로르디메포름(ISO)	6.5	0	
2925291000	디페닐구아니딘	6.5	0	
29252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25299090	기타	6.5	0	
2926100000	아크릴로니트릴	6.5	0	
2926200000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6.5	0	
2926300000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메타돈(INN) 제조중간체(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6.5	0	
2926901000	아세토니트릴	6.5	0	
2926902000	1,4-디아미노-2,3-디시아노안트라퀴논	6.5	0	
2926909010	말로노니트릴	6.5	0	
292690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26909099	기타	6.5	0	
2927001100	6-니트로-1-디아조-2-나프톨-4-술폰산	6.5	0	
2927001900	기타	6.5	0	
2927002100	아조디카본아미드	6.5	0	
2927002910	아조이소부티로니트릴	6.5	0	
2927002990	기타	6.5	0	
2927003000	아족시-화합물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28001000	페닐히드라진	6.5	0	
2928009010	페릴랄틴	6.5	0	
2928009020	메틸에틸 케토옥심	6.5	0	
292800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28009099	기타	6.5	3	
2929101000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6.5	0	
2929102000	디페닐메탄 디이소시아네이트	6.5	0	
2929109000	기타	6.5	0	
2929901000	이소시안화물	6.5	0	
2929903000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데이트	6.5	0	
2929904000	디에틸-노르말, 노르말-디메틸 포스포라미데이트	6.5	0	
2929905000	오르토-에틸-2-디이소프로필 아미노에틸 메틸포스포나이트	6.5	0	
2929906000	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딕 디할라이드	6.5	0	
2929909000	기타	6.5	0	
2930201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0201090	기타	6.5	3	
2930202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0202090	기타	6.5	0	
2930301000	티우람 모노-술파이드	6.5	0	
2930302000	티우람 디-술파이드	6.5	0	
2930303000	티우람 테트라-술파이드	6.5	0	
2930400000	메티오닌	6.5	0	
2930501000	캡타폴(ISO)	6.5	0	
2930502000	메타미도포스(ISO)	6.5	0	
2930901000	2-아미노-4-메틸티오부티르산나트륨	6.5	0	
2930902010	티오우레아	6.5	0	
2930902020	티오카르바닐리드	6.5	0	
2930902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0902099	기타	6.5	0	
2930903010	티오알코올	6.5	0	
2930903020	티오페놀	6.5	0	
2930903030	엔, 엔-디이소프로필-베타-아미노에탄티올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30903040	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아미노에탄-2-티올과 그들의 수소화된 염	6.5	0	
2930904010	티오디글리콜(INN)[비스(2-히드록시에틸) 술파이드]	6.5	3	
2930904020	티오아닐린	6.5	0	
2930904090	기타	6.5	0	
2930905010	2-클로로 에틸클로로메틸술파이드	6.5	0	
2930905020	비스(2-클로로에틸)술파이드	6.5	0	
2930905030	비스(2-클로로에틸티오)메탄	6.5	0	
2930905040	1,2-비스(2-클로로에틸티오)에탄	6.5	0	
2930905050	1,3-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프로판	6.5	0	
2930905060	1,4-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부탄	6.5	0	
2930905070	1,5-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펜탄	6.5	0	
2930905081	비스(2-클로로에틸티오메틸)에테르	6.5	0	
2930905082	비스(2-클로로에틸티오메틸)에테르	6.5	0	
2930905090	기타	6.5	0	
2930906000	[에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그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 그들의 알칼화 또는 수소화된 염	6.5	0	
2930907000	오, 오-디에틸에스-[2-(디에틸아미노)에틸]포스포로티오에이트와 그의 알칼화 또는 수소화된 염	6.5	0	
2930908000	오-에틸, 에스-페닐 에틸포스포노티올로티오네이트(포노포스)	6.5	0	
2930909010	티오산	6.5	0	
2930909020	이소티오시아네이트	6.5	0	
2930909030	시스테인	6.5	3	
2930909040	시스틴	6.5	3	
2930909050	글루타티온	6.5	3	
2930909060	8-클로로-6-토실로틴산에틸에스테르	6.5	0	
2930909070	하나의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그룹 이외에는 더 이상의 탄소원자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인원자를 함유하는 것	6.5	0	
2930909080	디티오카르본산염(크산틴산염)	6.5	0	
293090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0909099	기타	6.5	5	
2931002010	2-클로로비닐 디클로로아르신	6.5	0	
2931002020	비스(2-클로로비닐)클로로아르신	6.5	0	
2931002030	트리스(2-클로로비닐) 아르신	6.5	0	
2931002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1002099	기타	6.5	0	
2931003100	[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 하이드로젠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나이트와 그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 그들의 알칼화 또는 수소화된 염	6.5	0	
2931003300	오-이소프로필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6.5	0	
2931003400	오-피나콜릴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6.5	0	
2931003500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	6.5	0	
2931003700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도시아니데이트	6.5	0	
2931003911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6.5	0	
2931003912	디에틸 에틸포스포네이트	6.5	0	
2931003913	디에틸 메틸포스포네이트	6.5	0	
2931003914	디메틸 에틸포스포네이트	6.5	0	
2931003915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1003919	기타	6.5	3	
2931004010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포스포닐 디플루오라이드	6.5	0	
2931004090	기타	6.5	0	
2931005010	메틸포스포닐디클로라이드	6.5	0	
2931005020	메틸포스피닐디클로라이드	6.5	0	
2931005030	에틸포스포닐디클로라이드	6.5	0	
2931005040	에틸포스피닐디클로라이드	6.5	0	
2931005090	기타	6.5	0	
2931009010	디부틸 틴 옥사이드	6.5	0	
2931009020	디에틸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6.5	0	
293100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31009099	기타	6.5	3	
2932110000	테트라히드로푸란	6.5	0	
2932120000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6.5	0	
2932131000	푸르푸릴 알코올	6.5	0	
2932132000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 알코올	6.5	0	
293219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2199000	기타	6.5	0	
2932211000	쿠마린	5	0	
2932212000	메틸쿠마린	5	0	
2932213000	에틸쿠마린	5	0	
2932291000	노나락톤	5	0	
2932292000	운데카락톤	5	0	
2932293000	부티로락톤	5	0	
2932294000	산토닌	5	0	
2932295000	페놀프탈레인	5	0	
2932296000	글루쿠로노락톤	5	0	
2932297000	탈수소초산과 그 염	5	0	
2932298000	아세틸케텐(디케텐)	5	0	
29322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2299090	기타	5	0	
2932910000	이소사프롤	6.5	0	
2932920000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6.5	0	
2932930000	피페로날	6.5	0	
2932940000	사프롤	6.5	0	
2932950000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6.5	0	
2932991000	디옥산	6.5	0	
2932992000	벤조푸란(쿠마론)	6.5	0	
29329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2999090	기타	6.5	5	
2933111000	메틸렌비스(1-페닐-2,3-디메틸-4-메틸아미노피라조론-5)	6.5	0	
2933119010	페나존(안티피린)	6.5	0	
2933119030	설피린	6.5	0	
2933119040	이소프로필 안티피린	6.5	0	
293311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3119099	기타	6.5	0	
2933191000	피라조론과 그 유도체	6.5	0	
2933199010	페닐부타존	6.5	0	
2933199020	피라졸레이트	6.5	0	
293319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3199099	기타	6.5	5	
2933211000	히단토인	6.5	0	
2933212000	히단토인의 유도체	6.5	0	
2933291000	리시딘	6.5	0	
29332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3299090	기타	6.5	5	
2933311000	피리딘	6.5	5	
2933312000	피리딘의 염	6.5	0	
2933321000	피페리딘	6.5	3	
2933329000	피페리딘의 염	6.5	0	
2933330000	알펜타닐(INN), 아닐레리딘(INN), 베지트라마이드(INN), 브로마제팜(INN), 디페녹신(INN), 디펜옥실레이트(INN), 디피파논(INN), 펜타닐(INN), 케토베미돈(INN), 메틸페니데이트(INN), 펜타조신(INN), 페티딘(INN), 페티딘(INN) 제조중간체 에이, 펜사이클리딘(INN)(PCP), 페노페리딘(INN), 피프라드롤(INN), 피리트라마이드(INN), 프로피람(INN) 및 트리메페리딘(INN), 그들의 염	6.5	0	
2933391000	아소니코틴산 히드라지드	6.5	0	
2933393000	3-히드록시-1-메틸피페리딘	6.5	0	
2933394000	3-퀴뉴클리디닐 벤질레이트	6.5	0	
2933395000	퀴뉴클리딘-3-올	6.5	0	
29333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3399090	기타	6.5	0	
2933410000	레보파놀(INN) 및 그 염	6.5	0	
2933491000	피비니뭄파모에이트	6.5	0	
29334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3499090	기타	6.5	0	
2933520000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33530000	아로바르비탈(INN), 아모바르비탈(INN), 바르비탈(INN), 부탈비탈(INN), 부토바르비탈(INN), 싸이클로바르비탈(INN), 메틸페노바르비탈(INN), 펜토바르비탈(INN), 페노바르비탈(INN), 섹부타바르비탈(INN), 세코바르비탈(INN) 및 비닐비탈(INN), 그들의 염	6.5	0	
2933540000	기타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 유도체, 그들의 염	6.5	0	
2933550000	로프라졸람(INN), 메크로콰론(INN), 메타콰론(INN) 및 지페프롤(INN), 그들의 염	6.5	0	
2933591100	5-플루오르우라실	6.5	0	
2933591910	피리미딘	6.5	0	
29335919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3591999	기타	6.5	0	
2933592010	피페라진	6.5	0	
2933592020	시트르산 피페라진	6.5	0	
2933592030	아디프산 피페라진	6.5	0	
2933592040	1-아미노-4-메틸피페라진	6.5	0	
2933592090	기타	6.5	5	
2933599000	기타	6.5	0	
2933610000	멜라민	6.5	3	
2933691000	염화시아눌	3	0	
2933692000	헥사메틸렌테트라민	6.5	0	
2933699010	트리메틸렌 트리니트라민	6.5	0	
293369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3699099	기타	6.5	0	
2933710000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3	0	
2933720000	클로바잠(INN)과 메티프리론(INN)	6.5	0	
2933791000	이사틴	6.5	0	
2933792000	2- 히드록시퀴놀린	6.5	0	
2933793000	1-비닐-2-피롤리돈	6.5	0	
2933799000	기타	6.5	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33910000	알프라졸람(INN), 카마제팜(INN),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 클로나제팜(INN), 클로라제페이트, 델로라제팜(INN), 디아제팜(INN), 에스타졸람(INN), 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 플루디아제팜(INN), 플루니트라제팜(INN), 플루라제팜(INN), 할라제팜(INN), 로라제팜(INN), 로르메타제팜(INN), 마진돌(INN), 메다제팜(INN), 미다졸람(INN), 니메타제팜(INN), 니트라제팜(INN), 놀다제팜(INN), 옥사제팜(INN), 피나제팜(INN), 프라제팜(INN), 피로발레론(INN), 테마제팜(INN), 테트라제팜(INN) 및 트리아졸람(INN), 그들의 염	6.5	0	
2933991000	인돌과 그 유도체	6.5	0	
29339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3999090	기타	6.5	0	
2934101000	아미노티아졸 및 그 유도체	6.5	0	
293410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4109090	기타	6.5	0	
2934201000	벤조티아졸	6.5	0	
2934202000	머캡프토 벤조티아졸	6.5	0	
2934203000	디벤조티아졸릴 디술파이드	6.5	0	
293420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4209090	기타	6.5	0	
2934301000	페노티아진(티오디페닐아민)	6.5	0	
2934309000	기타	6.5	0	
2934910000	아미노렉스(INN), 브로티졸람(INN), 클로티아제팜(INN), 클록사졸람(INN), 덱스트로모라마이드(INN), 할록사졸람(INN), 케타졸람(INN), 메소카브(INN), 옥사졸람(INN), 페몰린(INN), 펜디메트라진(INN), 펜메트라진(INN) 및 서펜타닐(INN), 그들의 염	6.5	0	
2934991000	모르포린	6.5	0	
2934992000	핵산, 그들의 염 및 유도체	6.5	0	
2934993000	7-아미노세팔로스포린산	6.5	3	
29349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4999090	기타	6.5	3	
2935002000	5-아미노-2-메틸-엔-페닐벤젠 술폰아미드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35003000	파라-톨루이딘-3-술폰아닐리드	6.5	0	
2935004000	2-아미노-엔-에틸벤젠 술폰아닐리드	6.5	0	
2935006000	술파메톡사졸	6.5	0	
2935007000	술파메독신	6.5	0	
2935008010	술파민	6.5	0	
2935008020	술파피리딘	6.5	0	
2935008030	술파디아진	6.5	0	
2935008040	술파메라진	6.5	0	
2935008050	술파티아졸	6.5	0	
2935008090	기타	6.5	0	
293500902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5009090	기타	6.5	3	
2936210000	비타민 A와 그들의 유도체	6.5	3	
2936220000	비타민 B1과 그 유도체	6.5	3	
2936230000	비타민 B2와 그 유도체	6.5	0	
2936240000	디 또는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3 또는 비타민 B5)과 그 유도체	6.5	3	
2936250000	비타민 B6와 그 유도체	6.5	3	
2936260000	비타민 B12와 그 유도체	6.5	3	
2936271000	아스코르브산	6.5	3	
2936272000	아스코르브산나트륨	6.5	3	
2936273000	아스코르브산 칼슘	6.5	3	
2936279000	기타	6.5	3	
2936281000	초산알파-토코페롤	6.5	3	
2936289000	기타	6.5	3	
2936291010	비타민 B9	6.5	3	
2936291090	기타	6.5	3	
2936292000	비타민 D와 그들의 유도체	6.5	3	
2936293000	비타민 H와 그 유도체	6.5	3	
2936294000	비타민 K와 그들의 유도체	6.5	3	
2936295000	니코틴아미드와 그 유도체	6.5	3	
2936299000	기타	6.5	3	
2936901000	프로비타민(혼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5	3	
2936909000	기타	6.5	3	
2937111000	소호 제2933.9호 또는 제2934.9호의 것	6.5	0	
2937119000	기타	0	0	
2937120000	인슐린과 그 염	0	0	
2937191000	소호 제2933.9호 또는 제2934.9호의 것	6.5	0	
2937199000	기타	0	0	
2937211000	코르티손	0	0	
2937212000	히드로코르티손	0	0	
2937213000	프레드니손	0	0	
2937214000	프레드니소론	0	0	
29372200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0	0	
2937230000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0	0	
2937292000	소호 제2914.50호의 것	5.5	0	
2937299000	기타	0	0	
2937310000	에피네프린	0	0	
2937391000	소호 제2922.50호의 것	6.5	0	
2937399000	기타	0	0	
2937400000	아미노산 유도체	0	0	
2937501000	소호 제2918.19호 또는 제2918.9호의 것	6.5	0	
2937502000	소호 제2934.9호의 것	6.5	0	
2937509000	기타	0	0	
2937901000	소호 제2933.9호 또는 제2934.9호의 것	6.5	0	
2937909000	기타	0	0	
2938101000	루토시드(루틴)	6.5	0	
2938102000	루토시드의 유도체	6.5	0	
2938901000	디기탈리스 글리코시드	6.5	0	
2938902000	글리시리진과 글리시리제이트	6.5	3	
2938903000	사포닌	6.5	3	
2938904000	스테비오사이드	6.5	0	
2938909000	기타	6.5	5	
2939111000	모르핀	0	0	
2939112000	에틸모르핀	0	0	
2939113000	코데인	0	0	
2939114000	양귀비 줄기 농축물(알칼로이드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8	0	
2939119000	기타	0	0	
2939190000	기타	0	0	
2939200000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0	0	
2939300000	카페인과 그 염	0	0	
2939411000	에페드린	0	0	
2939419000	에페드린의 염	0	0	
2939421000	슈도에페드린(INN)	0	0	
2939429000	슈도에페드린의 염	0	0	
2939430000	캐틴(INN)과 그 염	0	0	
2939491000	놀에페드린	0	0	
2939499000	기타	0	0	
2939510000	페네틸린(INN)과 그 염	0	0	
2939590000	기타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39611000	엘고메트린(INN)	0	0	
2939619000	엘고메트린(INN)의 염	0	0	
2939621000	엘고타민(INN)	0	0	
2939629000	엘고타민(INN)의 염	0	0	
2939631000	리세르그산	0	0	
2939639000	리세르그산의 염	0	0	
2939690000	기타	0	0	
2939910000	코카인, 에크코닌, 레보메탐페타민, 메탐페타민(INN), 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그들의 염, 그들의 에스테르와 기타 그들의 유도체	0	0	
293999100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	0	0	
2939992000	아레코린	0	0	
2939993000	피페린	0	0	
2939994000	니코틴과 그 염	0	0	
2939999000	기타	0	0	
2940001010	갈락토오스	6.5	0	
2940001020	소르보오스	6.5	0	
2940001030	크실로오스	6.5	3	
2940001090	기타	6.5	3	
2940002010	히드록시프로필 슈크로오스	6.5	0	
2940002090	기타	6.5	3	
2941101000	페니실린 지 칼륨	6.5	0	
2941109010	페니실린 지 나트륨	6.5	0	
2941109020	페니실린 브이	6.5	0	
2941109090	기타	6.5	5	
294120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41209000	기타	6.5	0	
2941301000	클로로 테트라사이클린	6.5	0	
2941302000	염산 옥시 테트라사이클린	6.5	0	
2941303000	염산 클로로 테트라사이클린	6.5	0	
2941309000	기타	6.5	3	
2941400000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그들의 염	6.5	3	
2941501000	에리즈로마이신 티오시아네이트	6.5	3	
2941509000	기타	6.5	3	
2941902000	11-알파-클로로-6-데옥시-6-데메틸-6-메틸렌-5-옥시테트라사이클린-파라톨루엔술포네이트	6.5	0	
2941909010	황산 카나마이신	6.5	3	
2941909020	레더마이신	6.5	0	
2941909030	황산 겐타마이신	6.5	0	
2941909040	류코마이신	6.5	3	
294190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41909099	기타	6.5	0	
2942001000	케텐	6.5	0	
2942009010	아세트 아비산 동	6.5	0	
2942009090	기타	6.5	3	
3001201000	선추출물	0	0	
3001202000	간장추출물	0	0	
3001203000	담낭추출물	0	0	
3001204000	췌장추출물	0	0	
3001205000	위장추출물	0	0	
3001209000	기타	0	0	
3001901010	인체의 것	0	0	
3001901090	기타	0	0	
3001902010	웅담	0	0	
3001902090	기타	0	0	
3001909010	헤파린과 그 염	0	0	
3001909020	인체의 것	0	0	
3001909090	기타	0	0	
3002101000	혈액분획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	0	0	
3002102010	헤모글로빈	0	0	
3002102020	글로부린	0	0	
3002103000	트롬빈과 프로트롬비나제	0	0	
3002109010	면역혈청	0	0	
3002109020	혈청과 혈장(합성의 것을 제외한다)	0	0	
3002109090	기타	0	0	
3002200000	백신(인체의약용의 것에 한한다)	0	0	
3002301000	구제역 백신	0	0	
3002309000	기타	0	0	
3002901000	인혈	0	0	
3002902000	동물의 피(치료용, 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	0	0	
3002903010	색시톡신	6.5	0	
3002903020	라이신	8	0	
3002903090	기타	0	0	
3002904000	미생물배양체	0	0	
3002905000	바이러스 및 항바이러스	0	0	
3002906000	살균소	0	0	
3002909000	기타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3003101000	페니실린 또는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를 함유하는 것	8	0	
3003102000	스트렙토마이신 또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8	0	
3003201000	항결핵제 및 항암제	8	3	
3003209010	클로람 페니콜제제	8	0	
3003209090	기타	8	3	
3003310000	인슐린을 함유한 것	8	0	
3003391010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제제	8	0	
3003391020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8	0	
3003392000	수액선 호르몬제제	8	0	
3003393000	갑상선 및 부갑상선 호르몬제제	8	0	
3003394000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8	0	
3003395000	부신피질 호르몬제제	8	0	
3003396000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8	0	
3003397000	남성 호르몬제제	8	0	
3003398000	난포 및 황체 호르몬제제	8	0	
3003399000	기타	8	3	
3003401000	항암제	8	0	
3003409110	모르핀제제	8	0	
3003409120	키닌제제	8	0	
3003409130	테오브로민제제	8	0	
3003409210	카페인제제	8	0	
3003409220	스트리키닌제제	8	0	
3003409230	에페드린제제	8	0	
3003409310	코카인제제	8	0	
3003409320	맥각알카로이드제제	8	0	
3003409330	니코틴제제	8	0	
300340940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8	0	
3003409500	아레코린제제	8	0	
3003409600	피페린제제	8	0	
3003409900	기타	8	0	
3003901000	항결핵제, 구충제 및 항암제	8	3	
3003909100	아스피린제제	8	0	
3003909200	항히스타민제제	8	0	
3003909300	비타민제제	8	0	
3003909400	녹용제제	8	0	
3003909500	인삼제제	8	0	
3003909600	로얄젤리제제	8	0	
300390990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3004101000	페니실린 또는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에 한한다)를 함유한 것	8	0	
3004102000	스트렙토마이신 또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8	3	
3004201000	항결핵제, 구충제 및 항암제	8	3	
3004209100	클로람페니콜제제	8	0	
3004209200	에리즈로마이신제제	8	0	
3004209300	옥시테트라 사이클린제제	8	3	
3004209400	카나마이신제제	8	0	
3004209900	기타	8	3	
3004310000	인슐린을 함유한 것	8	0	
30043200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 그들의 유도체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을 함유하는 것	8	3	
3004391010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제제	8	3	
3004391020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8	0	
3004392000	수액선 호르몬제제	8	0	
3004393000	갑상선 및 부갑상선 호르몬제제	8	0	
3004394000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제	8	0	
3004395000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8	0	
3004396000	남성 호르몬제제	8	0	
3004397000	난포 및 황체 호르몬제제	8	0	
3004399000	기타	8	3	
3004401000	항암제	8	3	
3004409110	모르핀제제	8	0	
3004409120	키닌제제	8	0	
3004409130	테오브로민제제	8	0	
3004409210	카페인제제	8	0	
3004409220	스트리크닌제제	8	0	
3004409230	에페드린제제	8	0	
3004409310	코카인제제	8	0	
3004409320	맥각알카로이드제제	8	0	
3004409330	니코틴제제	8	0	
300440940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8	0	
3004409500	아레코린제제	8	0	
3004409600	피페린제제	8	0	
3004409900	기타	8	3	
3004501000	비타민 A 제제	8	0	
3004502010	비타민 B1 제제	8	0	
3004502090	기타	8	3	
3004503000	비타민 C 제제	8	0	
3004504000	비타민 D 제제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004505000	비타민 E 제제	8	0	
3004506000	비타민 H 제제	8	0	
3004507000	비타민 K 제제	8	0	
3004509000	기타	8	3	
3004901000	항결핵제, 구충제 및 항암제	8	3	
3004909100	아스피린제제	8	0	
3004909200	항히스타민제제	8	0	
3004909300	녹용제제	8	0	
3004909400	인삼제제	8	0	
3004909500	로열젤리제제	8	0	
3004909900	기타	8	3	
3005101000	반창고	0	0	
3005109000	기타	0	0	
3005901000	탈지면	0	0	
3005902000	거어즈	0	0	
3005903000	붕대	0	0	
3005904000	조제드레싱과 습포제	0	0	
3005909000	기타	0	0	
3006101010	살균한 외과용의 캣거트	0	0	
3006101020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흡수성 외과용 또는 치과용 사(絲)를 포함한다]	0	0	
3006102000	살균한 외과용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0	0	
3006103000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살균한 라미나리아의 텐트	0	0	
3006104000	살균한 흡수성 외과용 또는 치과용 지혈제	0	0	
3006105010	플라스틱제의 것	6.5	5	
3006105020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것	8	0	
3006105090	기타	0	0	
3006200000	혈액형 분류용 시약	0	0	
3006301000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0	0	
3006302000	진단용 시약(환자투여용의 것)	0	0	
3006401000	치과용 시멘트	0	0	
3006402000	치과용 충전제	0	0	
3006403000	뼈형성용 시멘트	0	0	
3006500000	구급상자와 구급대	0	0	
3006600000	호르몬, 제 2937 호의 기타 제품 또는 살정자제를 기제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0	0	
3006700000	외과 수술이나 신체검사시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 또는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 또는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 조제품	6.5	3	
3006910000	장루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6.5	0	
3006921010	피부 및 뼈(이식용의 것에 한한다)	0	0	
3006921090	기타	0	0	
3006922010	혈액분획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	0	0	
3006922020	헤모글로빈과 글로부린	0	0	
3006922031	색시토신	6.5	0	
3006922032	라이신	8	0	
3006922090	기타	0	0	
3006923000	제 3003 호 또는 제 3004 호의 것	8	0	
3006924000	제 3005 호 또는 제 3006 호의 것	0	0	
3006925000	소호 제 3824.90 호의 것	6.5	0	
3101001010	구아노	6.5	0	
3101001090	기타	6.5	0	
3101002000	식물성 비료	6.5	3	
3101003000	동물성 또는 식물성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6.5	0	
3102101000	비료 또는 비료제조용의 것	2	0	
3102109000	기타	6.5	0	
3102210000	황산암모늄	6.5	0	
3102291000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	6.5	0	
3102292000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혼합물	6.5	0	
3102300000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5	0	
3102400000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 또는 기타 비료가 아닌 무기물을 가한 것에 한한다)	6.5	0	
3102501000	천연의 것	6.5	0	
3102509000	기타	6.5	0	
3102600000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겹염 및 혼합물	6.5	0	
3102800000	요소 및 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 또는 암모니아용액으로 한 것에 한한다)	6.5	0	
3102901000	질산칼슘과 질산마그네슘의 겹염	6.5	0	
3102909000	기타	6.5	0	
3103100000	과인산석회	6.5	0	
3103901000	소성인산석회	6.5	0	
3103902000	오르토인산수소칼슘(플루오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2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6.5	0	
3103903000	기타 인산석회	6.5	0	
3103904000	혼합 인산질비료	6.5	0	
3103909000	기타	6.5	0	
3104200000	염화칼륨	0	0	
3104301000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2 퍼센트 이하인 것	1	0	
3104309000	기타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104901010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30퍼센트 이하인 것	1	0	
3104901090	기타	6.5	0	
3104909000	기타	1	0	
3105100000	정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이 류의 물품	6.5	3	
3105200000	3 종의 비료요소인 질소, 인 및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6.5	3	
3105300000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6.5	0	
310540000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및 이와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6.5	0	
3105510000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6.5	0	
3105590000	기타	6.5	3	
3105600000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6.5	0	
3105901000	질소와 칼륨을 함유한 비료	6.5	3	
3105909000	기타	6.5	3	
3201100000	퀘브라쵸 엑스	6.5	0	
3201200000	왓틀엑스	6.5	0	
3201901010	망그로브 엑스	6.5	0	
3201901020	미로보란 엑스	6.5	0	
3201901030	수마크 엑스	6.5	0	
3201901040	감비어 엑스	6.5	0	
3201901090	기타	6.5	0	
3201902000	탄닌산과 그 염	6.5	0	
3201903000	탄닌의 에테르 또는 에스테르	6.5	0	
3201904000	기타 탄닌의 유도체	6.5	0	
3202101000	방향족 신탄스	6.5	0	
3202102000	염화 알킬술폰	6.5	0	
3202103000	수지성 유연제	6.5	0	
3202109000	기타	6.5	0	
3202901000	무기유연제	6.5	0	
3202902000	인조 탈회제	6.5	0	
3202909000	기타	6.5	3	
3203001100	천연 인디고	6.5	0	
3203001910	로그우드	6.5	0	
3203001920	백단향	6.5	0	
3203001930	엽록소	6.5	0	
3203001990	기타	6.5	3	
3203002010	코치니엘	6.5	0	
3203002020	커미즈	6.5	0	
3203002030	세피아	6.5	0	
3203002090	기타	6.5	0	
3203003000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를 기제로 한 조제품	6.5	3	
3204111000	분산성 염료 증간체(프레스케익에 한한다)	4	3	
3204119000	기타	8	0	
3204121000	산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	0	
3204122000	매염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	0	
3204130000	염기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	3	
3204140000	직접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	3	
3204150000	건염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	0	
3204160000	반응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	3	
3204170000	안료색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	3	
3204191000	유기용제 용해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	0	
3204192000	래피드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한 조제품	8	0	
3204193000	황화염료와 황화 건염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	0	
3204199000	기타	8	0	
3204200000	합성유기형광증백제	6.5	0	
3204901000	합성유기루미노퍼	6.5	0	
3204909000	기타	6.5	3	
3205001000	폴라스틱 안료색소	6.5	0	
3205009000	기타	6.5	3	
3206110000	건조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0퍼센트 이상인 것	6.5	0	
3206190000	기타	6.5	3	
3206200000	크로뮴화합물을 기제로 한 안료 및 그 조제품	6.5	0	
3206411000	군청	6.5	0	
3206419000	기타	6.5	0	
3206421000	리도폰	6.5	0	
3206429000	기타	6.5	0	
3206491000	아연회	6.5	0	
3206492000	광물성블랙	6.5	0	
3206493000	어드칼러	6.5	0	
3206494000	용해성 반다이케브라운	6.5	0	
3206495000	코발트 화합물을 기제로 한 안료	6.5	0	
3206496000	카드뮴화합물을 기제로 한 안료 및 그 조제품	6.5	0	
3206499000	기타	6.5	3	
3206500000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무기물	6.5	0	
3207100000	조제안료, 조제유백제, 조제그림물감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6.5	3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207201000	법랑과 유약	6.5	3	
3207202000	슬립	6.5	0	
3207209000	기타	6.5	3	
3207301000	금의 것	6.5	0	
3207302000	백금의 것	6.5	0	
3207303000	팔라듐의 것	6.5	0	
3207304000	은의 것	6.5	0	
3207309000	기타	6.5	3	
3207400000	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 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	6.5	0	
3208101010	에나멜	6.5	0	
3208101090	기타	6.5	3	
320810200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3	
3208103000	이 류의 주 제4호에 정의된 용액	6.5	0	
3208201011	에나멜	6.5	0	
3208201019	기타	6.5	3	
3208201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3	
3208201030	이 류의 주 제4호에 정의된 용액	6.5	3	
3208202011	에나멜	6.5	0	
3208202019	기타	6.5	0	
3208202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0	
3208202030	이 류의 주 제4호에 정의된 용액	6.5	0	
3208901011	에나멜	6.5	3	
3208901019	기타	6.5	0	
3208901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0	
3208901030	이 류의 주 제4호에 정의된 용액	6.5	0	
3208909011	에나멜	6.5	3	
3208909019	기타	6.5	3	
3208909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3	
3208909030	이 류의 주 제4호에 정의된 용액	6.5	3	
3209101011	에나멜	6.5	3	
3209101019	기타	6.5	3	
3209101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0	
3209102010	페인트(에나멜을 포함한다)	6.5	0	
3209102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0	
3209901011	에나멜	6.5	3	
3209901019	기타	6.5	3	
3209901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3	
3209909011	에나멜	6.5	0	
3209909019	기타	6.5	3	
3209909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210001011	에나멜	6.5	3	
3210001019	기타	6.5	0	
3210001091	에나멜	6.5	0	
3210001099	기타	6.5	3	
3210002010	오일 바니시	6.5	0	
3210002020	락, 천연검 또는 천연수지를 기제로 한 바니시와 래커	6.5	0	
3210002030	역청질, 피치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기제로 한 바니시	6.5	0	
3210002040	용제를 함유하지 아니한 액상 바니시	6.5	0	
3210003010	디스템퍼	6.5	0	
3210003090	기타	6.5	3	
3211000000	조제드라이어	6.5	3	
3212100000	스탬프용의 박	6.5	3	
3212901000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염료와 기타 착색제	6.5	3	
3212909000	기타	6.5	3	
3213101000	유성 회구류	6.5	0	
3213102000	수성 회구류	6.5	0	
3213109000	기타	6.5	0	
3213901000	유성 회구류	6.5	3	
3213902000	수성 회구류	6.5	3	
3213909000	기타	6.5	3	
3214101060	고무를 기제로 한 것	6.5	0	
3214101080	수지매스틱과 수지시멘트	6.5	3	
3214101090	기타	6.5	3	
3214102000	도장용 충전제	6.5	0	
3214109000	기타	6.5	3	
3214900000	기타	6.5	3	
3215110000	흑색의 것	6.5	3	
3215190000	기타	6.5	3	
3215901000	필기용 잉크	6.5	0	
3215902000	제도용 잉크	6.5	0	
3215903000	복사용 잉크	6.5	0	
3215904010	유성의 것	6.5	0	
3215904020	수성의 것	6.5	0	
3215904030	유성 및 수성 겸용의 것	6.5	0	
3215905000	금속성 잉크	6.5	0	
3215906010	유성의 것	6.5	0	
3215906020	수성의 것	6.5	0	
3215906030	유성 및 수성 겸용의 것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304911000	페이스파우다	6.5	3	
3304912000	베이비파우다(탈쿰파우다를 포함한다)	6.5	0	
3304919000	기타	6.5	3	
3304991000	기초화장용 제품류	6.5	5	
3304992000	메이크업용 제품류	6.5	3	
3304993000	어린이용 제품류	6.5	5	
3304999000	기타	6.5	3	
3305100000	샴푸	6.5	5	
3305200000	퍼머넌트 웨이빙용 또는 스트레이트닝용 제품류	6.5	5	
3305300000	헤어래커	6.5	3	
3305901000	헤어린스	6.5	5	
3305902000	헤어크림	6.5	3	
3305909000	기타	6.5	3	
3306100000	치약	6.5	3	
3306201011	70 덱시텍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8	0	
3306201019	기타	8	0	
3306201020	구성하는 단사가 50 텍스를 초과하는 것	8	0	
3306209000	기타	8	0	
3306901000	구강위생용 제품류	6.5	5	
3306902000	치과위생용 제품류	6.5	3	
3307101000	아프터 셰이빙로숀	6.5	5	
3307109000	기타	6.5	3	
3307200000	인체탈취제 및 내발한제	6.5	5	
3307301000	가향한 목욕용 염	6.5	0	
3307302000	기타 목욕용 제품류	6.5	5	
3307410000	"아가바티"와 기타 분향(焚香)	6.5	0	
3307490000	기타	6.5	3	
3307901000	탈모제	6.5	5	
3307902000	향낭	6.5	3	
3307903000	콘택트렌즈의 액 또는 의안의 액	6.5	5	
3307909000	기타	6.5	0	
3401111000	약용비누	6.5	0	
3401119000	기타	6.5	3	
3401191010	세탁비누	6.5	0	
3401191090	기타	6.5	3	
3401192000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종이, 워딩, 펠트와 부직포	6.5	3	
3401200000	기타 형상의 비누	6.5	5	
3401300000	피부 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5	3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215909000	기타	6.5	3	
3301120000	오렌지유	5	5	
3301130000	레몬유	5	5	
3301190000	기타	5	5	
3301240000	박하유(멘타 피페리타)	5	5	
3301250000	기타 민트류의 것	5	5	
3301291000	바닐라유	5	5	
3301292000	시트로넬라유	5	5	
3301293000	신나몬바크유	5	5	
3301294000	신나몬리프유	5	5	
3301299000	기타	5	5	
3301300000	레지노이드	8	7	
3301901000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8	7	
3301902000	정유의 농축물	8	7	
3301903000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	8	7	
3301904100	아편의 것	8	7	
3301904200	감초의 것	8	7	
3301904300	호프의 것	30	7	
3301904400	제충국의 것 또는 로테논을 함유하는 식물뿌리의 것	8	7	
3301904510	백삼의 것	20	15	
3301904520	홍삼의 것	754.3	15	
3301904530	기타의 인삼의 것	20	15	
3301904600	캐슈넛 쉘액의 것	8	3	
3301904700	생칠의 것	8	3	
3301904800	기타	8	3	
3302101000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6.5	0	
3302102011	알코올성 합성조제품	30	10	
3302102019	기타	8	10	
3302102090	기타	6.5	0	
3302900000	기타	6.5	3	
3303001000	향수	6.5	5	
3303002000	화장수	6.5	5	
3304101000	립스틱	6.5	5	
3304109000	기타	6.5	5	
3304201000	아이샤도우	6.5	0	
3304209000	기타	6.5	0	
3304301000	네일에나멜	6.5	0	
3304309000	기타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402110000	음이온성의 것	8	3	
3402120000	양이온성의 것	8	0	
340213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3402139000	기타	8	3	
3402190000	기타	8	3	
3402201000	조제세제	6.5	3	
3402202000	조제청정제	6.5	3	
3402209000	기타	6.5	3	
3402901000	조제계면활성제	6.5	3	
3402902000	조제세제	6.5	3	
3402903000	조제청정제	6.5	3	
3403111000	방직용 섬유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6.5	0	
3403112000	가죽 또는 모피의 처리용 조제품	6.5	3	
3403119000	기타	6.5	0	
3403191000	조제절삭유	6.5	0	
3403192000	볼트 또는 너트 방출제	6.5	0	
3403193000	방청제 또는 부식방지제	6.5	3	
3403194000	이형조제품	6.5	0	
3403195000	신선용 조제윤활제	6.5	3	
3403199000	기타	6.5	3	
3403911000	방직용 섬유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6.5	0	
3403912000	가죽 또는 모피의 처리용 조제품	6.5	0	
3403919000	기타	6.5	0	
3403991000	조제절삭유	6.5	0	
3403992000	신선용 조제윤활유	6.5	3	
3403999000	기타	6.5	3	
340420000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6.5	0	
3404901010	클로로 파라핀왁스	6.5	0	
3404901020	오팔왁스	6.5	0	
3404901030	폴리알킬렌왁스	6.5	0	
3404901040	화학적으로 변성한 갈탄왁스	6.5	0	
3404901090	기타	6.5	3	
3404902000	조제왁스	6.5	3	
3405100000	신발 또는 가죽의 광택제, 크림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6.5	3	
3405200000	목제가구, 마루 또는 기타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 크림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6.5	3	
3405300000	자동차 차체용 광택제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를 제외한다)	6.5	3	
3405400000	조제연마페이스트와 조제연마분 및 기타 연마조제품	6.5	0	
3405901010	초크를 기제로 한 것	6.5	0	
3405901020	규조토를 기제로 한 것	6.5	0	
3405901030	다이아몬드분 또는 더스트를 기제로 한 것	6.5	0	
3405901090	기타	6.5	3	
3405909000	기타	6.5	3	
3406000000	양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5	3	
3407001000	조형용 페이스트	6.5	3	
3407002000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 재료"	6.5	0	
3407003000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기타 치과용 조제품	6.5	0	
3501101000	커피 크리머 제조용의 것	8	12	
3501109000	기타	20	12	
3501901110	커피 크리머 제조용의 것	8	10	
3501901190	기타	20	12	
3501901200	기타 카세인 유도체	20	12	
3501902000	카세인 글루	20	12	
3502110000	건조한 것	8	10	
3502190000	기타	8	10	
3502200000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8	10	
3502901000	알부민산염과 기타 알부민 유도체	8	5	
3502909000	기타	8	5	
3503001010	젤라틴	8	7	
3503001020	젤라틴 유도체	8	5	
3503002000	아이징글라스	8	3	
3503003000	기타 동물성 글루	8	3	
3504001010	펩톤	8	10	
3504001020	펩톤 유도체	8	3	
3504002010	케라틴	8	3	
3504002020	핵산단백질	8	3	
3504002030	유리단백질	8	3	
3504002090	기타	8	3	
3504003000	하이드 파우더	8	0	
3505101000	덱스트린	8	7	
3505102000	가용성 전분(아밀로겐)	8	10	
3505103000	배소전분	385.7	10	
3505104010	식품용의 것	385.7	15	
3505104090	기타	385.7	15	
3505105010	식품용의 것	385.7	15	
3505105090	기타	385.7	1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505109010	식품용의 것	385.7	10	
3505109090	기타	385.7	10	
3505201000	전분 글루	201.2	10	
3505202000	덱스트린 글루	201.2	10	
3505209000	기타	201.2	10	
3506101000	고무를 기제로 한 것	6.5	3	
3506102000	플라스틱(인조수지를 포함한다)을 기제로 한 것	6.5	0	
3506109000	기타	6.5	3	
3506910000	제 3901 호부터 제 3913 호까지의 폴리머 또는 고무를 기제로 한 접착제	6.5	3	
3506991000	비엔나 글루	6.5	0	
3506992000	화학처리한 천연검에서 얻은 글루	6.5	0	
3506993000	규산염을 기제로 한 글루	6.5	3	
3506999000	기타	6.5	3	
3507100000	레네트와 이들의 농축물	6.5	3	
3507901010	트립신	6.5	0	
3507901020	키모트립신	6.5	0	
3507901030	알파아밀라제	6.5	0	
3507901040	리파제	6.5	0	
3507901090	기타	6.5	0	
3507902000	펩신	6.5	0	
3507903000	맥아효소	6.5	0	
3507904010	파파인	6.5	0	
3507904020	브로멜라인	6.5	0	
3507904030	피신	6.5	0	
3507906010	아밀라제	6.5	0	
3507906020	프로테아제	6.5	0	
3507907000	펙틱효소	6.5	0	
3507908000	시토크롬 씨 산화효소	6.5	0	
3507909000	기타	6.5	0	
3601001000	흑색화약	6.5	0	
3601002000	무연화약	6.5	0	
3602000000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6.5	3	
3603001000	도화선	6.5	0	
3603002000	도폭선	6.5	0	
3603003000	뇌관	6.5	0	
3603004000	점화기	6.5	3	
3603005000	전기뇌관	6.5	0	
3604100000	불꽃제품	6.5	0	
3604901000	신호용 조명탄	6.5	0	
3604909000	기타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605001000	황린성냥	6.5	0	
3605009000	기타	6.5	0	
3606100000	끽연용 라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라이터의 충전 또는 재충전에 사용되는 종류의 용기(용량이 300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에 넣어진 액체연료 또는 액화가스연료	6.5	0	
3606901010	메타연료	6.5	0	
3606901020	헥사민	6.5	0	
3606901030	고체알코올	6.5	0	
3606901090	기타	6.5	0	
3606902010	라이터돌	6.5	0	
3606902090	기타	6.5	0	
3606909010	라이터돌	6.5	3	
3606909090	기타	6.5	0	
3701100000	엑스선용의 것	6.5	0	
370120000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6.5	0	
37013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6.5	0	
3701309100	인쇄제판용의 것	6.5	3	
37013092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1309910	천문용의 것	6.5	0	
37013099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1309991	평판디스플레이(블랭크마스크에 한한다)용의 것	3	0	
3701309999	기타	6.5	0	
370191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6.5	0	
37019191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19192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1919910	천문용의 것	6.5	0	
37019199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1919990	기타	6.5	0	
370199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3	0	
37019991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19992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1999910	천문용의 것	6.5	0	
37019999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1999990	기타	6.5	3	
3702100000	엑스선용의 것	6.5	0	
3702311110	네가티브	6.5	0	
3702311120	포지티브	6.5	0	
3702311210	네가티브	6.5	0	
3702311220	포지티브	6.5	0	
3702311910	네가티브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702311920	포지티브	6.5	0	
370231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31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31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0	
370231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2319090	기타	6.5	0	
3702321110	네가티브	6.5	0	
3702321120	포지티브	6.5	0	
3702321210	네가티브	6.5	0	
3702321220	포지티브	6.5	0	
3702321910	네가티브	6.5	0	
3702321920	포지티브	6.5	0	
370232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32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32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0	
370232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232903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6.5	0	
3702329090	기타	6.5	0	
3702391110	네가티브	6.5	0	
3702391120	포지티브	6.5	0	
3702391210	네가티브	6.5	0	
3702391220	포지티브	6.5	0	
3702391910	네가티브	6.5	0	
3702391920	포지티브	6.5	0	
370239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39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39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0	
370239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2399090	기타	6.5	0	
3702411010	네가티브	6.5	0	
3702411020	포지티브	6.5	0	
370241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41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41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0	
370241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2419090	기타	6.5	0	
3702421010	네가티브	6.5	0	
3702421020	포지티브	6.5	0	
370242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42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42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70242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2429090	기타	6.5	0	
3702431010	네가티브	6.5	0	
3702431020	포지티브	6.5	0	
370243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43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43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0	
370243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2439090	기타	6.5	0	
3702441010	네가티브	6.5	0	
3702441020	포지티브	6.5	0	
370244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44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44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0	
370244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2449090	기타	6.5	0	
3702511010	네가티브	6.5	0	
3702511020	포지티브	6.5	0	
370251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51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51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0	
370251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2519090	기타	6.5	0	
3702521010	네가티브	6.5	0	
3702521020	포지티브	6.5	0	
370252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52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52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0	
370252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2529090	기타	6.5	0	
3702530000	폭이 16 밀리미터 초과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의 것에 한한다)	6.5	0	
3702541010	네가티브	6.5	0	
3702541020	포지티브	6.5	0	
370254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54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54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0	
370254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2549090	기타	6.5	0	
3702551010	네가티브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703101010	엑스선용의 것	6.5	0	
3703101020	심전계용의 것	6.5	0	
3703101030	사진복사용의 것	6.5	0	
3703101040	기록용의 것	6.5	0	
3703101090	기타	6.5	0	
3703109010	엑스선용의 것	6.5	0	
3703109020	심전계용의 것	6.5	0	
3703109030	사진복사용의 것	6.5	0	
3703109040	기록용의 것	6.5	0	
3703109090	기타	6.5	0	
3703201000	엑스선용의 것	6.5	0	
3703202000	심전계용의 것	6.5	0	
3703203000	사진복사용의 것	6.5	0	
3703204000	기록용의 것	6.5	0	
3703209000	기타	6.5	0	
3703901000	엑스선용의 것	6.5	0	
3703902000	심전계용의 것	6.5	0	
3703903000	사진복사용의 것	6.5	0	
3703904000	기록용의 것	6.5	0	
3703909000	기타	6.5	0	
3704001110	뉴스용의 것	0	0	
3704001120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영화용 필름(대한민국 배우만 출연하는 것에 한한다)	0	0	
3704001190	기타	0	0	
3704001200	오프셋 복사용의 것(엽서, 그림엽서, 카드 및 캘린더 제작용의 것에 한한다)	0	0	
37040013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3704001900	기타	0	0	
3704002000	사진인화지, 판지 및 직물	6.5	0	
3705101000	엽서, 그림엽서, 카드 및 캘린더 제작용의 것	6.5	3	
3705109000	기타	0	0	
37059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3	0	
3705902010	엑스선 촬영한 것	0	0	
3705902020	도서를 복사한 것	0	0	
3705902030	서류를 복사한 것	0	0	
3705903000	마이크로필름	0	0	
3705909010	학술연구용의 것	0	0	
3705909020	천문용의 것	0	0	
3705909030	항공촬영용의 것	0	0	
3705909090	기타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702551020	포지티브	6.5	0	
370255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55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55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0	
370255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2559090	기타	6.5	0	
3702561010	네가티브	6.5	0	
3702561020	포지티브	6.5	0	
370256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56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56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0	
370256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2569090	기타	6.5	0	
3702911010	네가티브	6.5	0	
3702911020	포지티브	6.5	0	
370291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91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91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0	
370291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2919090	기타	6.5	0	
3702931010	네가티브	6.5	0	
3702931020	포지티브	6.5	0	
370293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93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93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0	
370293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2939090	기타	6.5	0	
3702941010	네가티브	6.5	0	
3702941020	포지티브	6.5	0	
370294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94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94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0	
370294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2949090	기타	6.5	0	
3702951010	네가티브	6.5	0	
3702951020	포지티브	6.5	0	
370295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95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95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0	
370295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2959090	기타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706101000	사운드트랙만의 것	195 원/m 또는 6.5	0	
3706102000	뉴스용의 것	4 원/m 또는 6.5	0	
3706103010	랏슈	26 원/m 또는 6.5	0	
3706103020	기타 네가티브 합작영화	468 원/m 또는 6.5	0	
3706103030	기타 포지티브 합작영화	78 원/m 또는 6.5	0	
3706104000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영화용 필름(단순히 외국풍물만 촬영한 것 또는 대한민국 배우만 출연한 것에 한한다)과 방화	26 원/m 또는 6.5	3	
3706105010	네가티브	1,092 원/m 또는 6.5	0	
3706105020	포지티브	182 원/m 또는 6.5	3	
3706106010	네가티브	1,560 원/m 또는 6.5	0	
3706106020	포지티브	260 원/m 또는 6.5	0	
3706901000	사운드트랙만의 것	9 원/m 또는 6.5	0	
3706902000	뉴스용의 것	5 원/m 또는 6.5	0	
3706903010	랏슈	26 원/m 또는 6.5	0	
3706903020	기타 네가티브 합작영화	468 원/m 또는 6.5	0	
3706903030	기타 포지티브 합작영화	78 원/m 또는 6.5	0	
3706904000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영화용 필름(단순히 외국풍물만 촬영한 것 또는 대한민국 배우만 출연한 것에 한한다)과 방화	26 원/m 또는 6.5	0	
3706905010	네가티브	25 원/m 또는 6.5	0	
3706905020	포지티브	8 원/m 또는 6.5	0	
3706906010	네가티브	1,092 원/m 또는 6.5	0	
3706906020	포지티브	182 원/m 또는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707100000	감광유제	6.5	0	
3707901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6.5	0	
3707901090	기타	6.5	0	
3707902100	천연색 사진용의 것	6.5	0	
3707902910	엑스선용의 것	6.5	0	
370790292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7902990	기타	6.5	0	
3707903100	천연색 사진용의 것	6.5	0	
3707903910	엑스선용의 것	6.5	0	
370790392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7903990	기타	6.5	0	
3707909100	증도제와 감도제	6.5	0	
3707909200	조색제	6.5	3	
3707909300	세정제	6.5	0	
3707909400	섬광재료	6.5	0	
3707909900	기타	6.5	0	
3801101000	2 차전지 제조용의 것	4	0	
3801109000	기타	6.5	3	
3801200000	콜로이드흑연 또는 반콜로이드흑연	6.5	0	
380130000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 및 노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	6.5	0	
3801900000	기타	6.5	3	
3802100000	활성탄	6.5	3	
3802901010	활성 규조토	6.5	0	
3802901020	활성토	6.5	3	
3802901090	기타	6.5	3	
3802902000	수탄(폐수탄을 포함한다)	6.5	0	
3803000000	토을오일(정제여부를 불문한다)	5	0	
3804001000	액상의 것	6.5	0	
3804009000	기타	6.5	0	
3805101000	검테레빈유	6.5	0	
3805102000	우드테레빈유	6.5	0	
3805103000	황산테레빈유	6.5	0	
3805900000	기타	6.5	0	
3806101000	로진	6.5	7	
3806102000	수지산	6.5	0	
3806201000	로진염	6.5	0	
3806202000	수지산염	6.5	0	
3806209000	기타	6.5	0	
3806300000	에스테르 검	6.5	0	
3806902000	련검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806903000	로진스프릿 및 로진유	6.5	0	
3806909000	기타	6.5	0	
3807001000	목타르, 목타르유 및 목크레오소트	6.5	0	
3807002000	목나프타	6.5	0	
3807003000	식물성피치	6.5	0	
3807009010	목초액	6.5	7	
3807009090	기타	6.5	0	
380850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3808509000	기타	6.5	5	
380891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3808919000	기타	6.5	5	
380892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3808929000	기타	6.5	5	
3808931000	제초제	6.5	5	
3808932000	발아억제제	6.5	0	
3808933000	식물성장조절제	6.5	3	
3808940000	소독제	6.5	3	
3808991000	살서제(쥐약)	6.5	0	
3808999000	기타	6.5	3	
3809100000	전분질을 기제로 한 것	8	10	
3809910000	섬유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6.5	3	
3809920000	제지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6.5	0	
3809930000	피혁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6.5	3	
3810101000	금속표면처리용의 침지조제품	6.5	3	
3810109000	기타	6.5	3	
3810901000	납붙임·땜질 또는 용접용 융제와 기타 보조 조제품	6.5	3	
3810909000	기타	6.5	0	
3811110000	납화합물을 기제로 한 것	6.5	0	
3811190000	기타	6.5	3	
3811210000	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는 것	5	3	
3811290000	기타	5	3	
3811900000	기타	6.5	3	
3812101000	디페닐구아니딘을 기제로 한 것	6.5	0	
3812102000	디티오카르바메이트를 기제로 한 것	6.5	0	
3812103000	티우람 술파이드를 기제로 한 것	6.5	0	
3812104000	헥사메틸렌테트라민을 기제로 한 것	6.5	0	
3812105000	머캡프토 벤조티아졸을 기제로 한 것	6.5	0	
3812106000	디벤조티아질 디술파이드를 기제로 한 것	6.5	0	
3812109000	기타	6.5	0	
3812200000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6.5	0	
3812301000	산화방지 조제품	6.5	0	
3812302000	기타 복합안정제	6.5	3	
3813001000	소화기용의 조제품	6.5	3	
3813002000	소화기용의 장전물	6.5	0	
3813003000	장전된 소화탄	6.5	0	
3814001010	아세톤·초산메틸 및 메틸알코올 혼합물	6.5	0	
3814001020	초산에틸·부틸알코올 및 톨루엔 혼합물	6.5	3	
3814001090	기타	6.5	3	
38140021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6.5	0	
3814002190	기타	6.5	0	
3814002900	기타	6.5	3	
3815110000	활성물질로서 니켈 또는 니켈화합물의 것	6.5	0	
3815121000	백금 또는 백금화합물의 것	6.5	0	
3815122000	팔라듐 또는 팔라듐화합물의 것	6.5	0	
3815129000	기타	6.5	3	
3815191000	활성물질로서 철 또는 철화합물의 것	6.5	0	
3815192000	티타늄 또는 티타늄화합물의 것	6.5	3	
3815199000	기타	6.5	3	
3815901000	반응시작제	6.5	0	
3815909000	기타	6.5	3	
3816001000	내화시멘트	6.5	3	
3816002000	내화모르타르	6.5	3	
3816003000	내화콘크리트	6.5	0	
3816009000	기타	6.5	0	
38170000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 2707 호 또는 제 2902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5	0	
38180010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원소	0	0	
38180020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화합물	0	0	
3819001000	유압제동액	6.5	0	
3819002000	기타 조제유압전동액	6.5	3	
3820001000	부동조제품	6.5	0	
3820002000	조제제빙액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821000000	미생물(바이러스 및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식물·인간 또는 동물세포의 성장 또는 보존을 위한 조제배양제	6.5	3	
3822001011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의 것	0	0	
3822001012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0	0	
3822001013	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 섬유의 웨브(제 48 류의 주 제 8 호의 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0	0	
3822001014	리트머스 시험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험지	0	0	
3822001019	기타	0	0	
3822001020	조제된 것(뒤편을 보강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3822001091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의 것	6.5	0	
3822001092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	6.5	0	
3822001093	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 섬유의 웨브(제 48 류의 주 제 8 호의 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0	0	
3822001099	기타	8	3	
3822002011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의 것	0	0	
3822002012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0	0	
3822002013	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 섬유의 웨브(제 48 류의 주 제 8 호의 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0	0	
3822002014	리트머스 시험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험지	0	0	
3822002019	기타	0	0	
3822002020	조제된 것(뒤편을 보강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3822002091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의 것	6.5	3	
3822002092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6.5	0	
3822002093	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 섬유의 웨브(제 48 류의 주 제 8 호의 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0	0	
3822002099	기타	8	5	
3822003041	이 표에서 세율이 무세인 것	0	0	
3822003042	이 표에서 세율이 1 퍼센트인 것	1	0	
3822003043	이 표에서 세율이 2 퍼센트인 것	2	0	
3822003044	이 표에서 세율이 3 퍼센트인 것	3	0	
3822003045	이 표에서 세율이 4 퍼센트인 것	4	0	
3822003046	이 표에서 세율이 5 퍼센트인 것	5	0	
3822003047	이 표에서 세율이 5.4 퍼센트인 것	5.4	0	
3822003048	이 표에서 세율이 6.5 퍼센트인 것	6.5	0	
3822003049	이 표에서 세율이 7 퍼센트인 것	7	0	
3822003050	이 표에서 세율이 8 퍼센트인 것	8	3	
3822003051	이 표에서 세율이 10 퍼센트인 것	10	0	
3822003052	이 표에서 세율이 20 퍼센트인 것	20	0	
3822003053	이 표에서 세율이 27 퍼센트인 것	27	0	
3822003054	이 표에서 세율이 30 퍼센트인 것	30	0	
3822003055	이 표에서 세율이 36 퍼센트인 것	36	0	
3822003056	이 표에서 세율이 40 퍼센트인 것	40	0	
3822003057	이 표에서 세율이 50 퍼센트인 것	50	0	
3822003058	소호 제 3706.10.1000 호, 제 3706.10.5020 호 및 제 3706.90.6020 호의 것	182 원/m 또는 6.5	0	
3822003059	소호 제 3706.10.2000 호 및 제 3706.90.2000 호의 것	4 원/m 또는 6.5	0	
3822003060	소호 제 3706.10.3010 호, 제 3706.10.4000 호, 제 3706.90.3010 호 및 제 3706.90.4000 호의 것	26 원/m 또는 6.5	0	
3822003061	소호 제 3706.10.3020 호 및 제 3706.90.3020 호의 것	468 원/m 또는 6.5	0	
3822003062	소호 제 3706.10.3030 호 및 제 3706.90.3030 호의 것	78 원/m 또는 6.5	0	
3822003063	소호 제 3706.10.5010 호 및 제 3706.90.6010 호의 것	1,092 원/m 또는 6.5	0	
3822003064	소호 제 3706.10.6010 호의 것	1,560 원/m 또는 6.5	0	
3822003065	소호 제 3706.10.6020 호의 것	260 원/m 또는 6.5	0	
3822003066	소호 제 3706.90.1000 호 및 제 3706.90.5020 호의 것	8 원/m 또는 6.5	0	
3822003067	소호 제 3706.90.5010 호의 것	25 원/m 또는 6.5	0	
3823110000	스테아린산	8	3	
3823120000	올레인산	8	3	
3823130000	톨유 지방산	8	0	
3823191000	팔미틴산	8	0	
3823192000	유지의 정제시 생긴 매시드유	8	0	
3823199000	기타	8	0	
3823701000	세틸 알코올	5	0	
3823702000	스테아릴 알코올	5	0	
3823703000	올레일 알코올	5	0	
3823704000	라우릴 알코올	5	0	
382370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824902490	기타	6.5	0	
3824903100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200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도시아니데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300	[에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그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 알킬을 포함한다)에스테르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그들의 알킬화 또는 수소화된 염들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400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닐디플루오라이드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500	[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나이트와 그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그들의 알킬화 또는 수소화된 염들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60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딕 디할라이드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700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데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80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2-클로로에틸아민 또는 그들의 수소화된 염들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911	엔,엔-디메틸-2-아미노에탄올 또는 엔, 엔-디에틸-2-아미노에탄올 또는 그들의 수소화된 염들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823709090	기타	5	3	
3824100000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6.5	3	
3824300000	응집하지 아니한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6.5	0	
3824400000	시멘트용·모르타르용 또는 콘크리트용 조제첨가제	6.5	0	
3824500000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6.5	3	
3824600000	솔비톨(소호 제 2905.44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8	3	
3824711000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을 기제로 한 세정제	6.5	0	
3824719000	기타	6.5	0	
38247200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또는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을 함유하는 것	6.5	0	
3824730000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	6.5	0	
3824740000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의 함유 여부는 불문하지만,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5	0	
3824750000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6.5	0	
3824760000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6.5	0	
3824770000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6.5	0	
3824780000	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탄소(CFCs) 또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5	0	
3824790000	기타	6.5	3	
3824810000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6.5	0	
3824820000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6.5	0	
382483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6.5	0	
3824901000	크롬광 배소물	5	0	
3824902100	진공관의 것타	6.5	0	
3824902200	탄소저항 또는 세라믹솔리드 저항조제품	6.5	0	
38249024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824903919	기타	6.5	0	
382490392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탄-2-티올 또는 그들의 수소화된 염들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930	하나의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그룹 이외에는 더 이상의 탄소원자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인원자를 함유하는 화합물로 주로 구성된 기타 혼합물	6.5	0	
3824903990	기타	6.5	0	
3824904100	혼합플리에틸렌글리콜	6.5	0	
3824904200	이온교환체	6.5	0	
3824904300	스케일방지제	6.5	3	
3824904400	바니시 또는 글루의 경화제	6.5	3	
3824905100	잉크제거제	6.5	0	
3824905200	등사판 원지수정제	6.5	0	
3824905300	수정액	6.5	0	
3824906100	페인트용 혼합증량제	6.5	0	
3824906200	특정요업제품 제조용 조제품(의치 등)	6.5	5	
3824906300	소다석회	6.5	0	
3824906400	수화실리카겔	6.5	0	
3824906500	방청제	6.5	0	
3824906600	세라믹콘덴서와 페라이트코어 제조용 조제품	6.5	0	
3824907100	도금용 조제품	6.5	0	
3824907200	염화파라핀	6.5	0	
3824907300	소포제	6.5	0	
3824907400	발포제	6.5	3	
3824907500	조제탄산칼슘	6.5	0	
3824907600	액정용 조제품	6.5	0	
3824907700	암모니아성 가스액	6.5	0	
3824908010	메틸에틸케톤 퍼록사이드를 기제로 한 것	6.5	0	
3824908090	기타	6.5	0	
3824909010	미량요소비료(제 31 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6.5	3	
3824909020	폴리디페닐 메탄 폴리디이소시아네이트(크루드 엠디아이)	6.5	0	
3824909030	추잉검 베이스	6.5	0	
3824909050	나프텐산, 그들의 수불용성염과 그들의 에스테르	6.5	0	
3824909090	기타	6.5	3	
3825100000	생활폐기물	6.5	0	
3825200000	하수 찌꺼기	6.5	0	
3825301000	제 3005 호의 것	0	0	
3825302000	소호 제 3824.90 호의 것	6.5	0	
3825303000	소호 제 4015.11 호의 것	8	0	
3825304000	소호 제 9018.3 호의 것	8	0	
3825410000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6.5	0	
3825490000	기타	6.5	0	
3825500000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및 부동액 폐기물	6.5	0	
3825610000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6.5	0	
3825690000	기타	6.5	0	
3825900000	기타	6.5	3	
3901101000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6.5	0	
3901109000	기타	6.5	0	
3901201000	펄프의 것	6.5	0	
3901209000	기타	6.5	0	
390130000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6.5	0	
3901900000	기타	6.5	0	
3902100000	폴리프로필렌	6.5	0	
3902200000	폴리이소부틸렌	6.5	0	
3902300000	프로필렌 공중합체	6.5	0	
3902900000	기타	6.5	0	
3903110000	발포성의 것	6.5	0	
3903190000	기타	6.5	0	
3903200000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SAN) 공중합체	6.5	0	
390330000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공중합체	6.5	0	
3903901000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	6.5	0	
3903909000	기타	6.5	0	
390410000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5	0	
3904210000	가소화하지 아니한 것	6.5	0	
3904220000	가소화 한 것	6.5	0	
3904300000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6.5	0	
3904400000	기타 염화비닐 공중합체	6.5	0	
3904500000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6.5	0	
3904610000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6.5	0	
3904690000	기타	6.5	0	
3904900000	기타	6.5	0	
3905120000	물에 분산된 것	6.5	0	
3905190000	기타	6.5	0	
3905210000	물에 분산된 것	6.5	0	
3905290000	기타	6.5	0	
3905300000	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되지 않은 초산기(基)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905910000	공중합체	6.5	0	
3905990000	기타	6.5	0	
3906100000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6.5	0	
3906901000	폴리아크릴아미드	8	0	
3906909000	기타	8	0	
3907100000	폴리아세탈수지	6.5	0	
390720100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	6.5	0	
3907202000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	6.5	0	
3907203000	폴리페닐렌 옥사이드	6.5	0	
3907209000	기타	6.5	0	
39073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6.5	0	
3907309000	기타	6.5	0	
3907400000	폴리카보네이트	6.5	0	
3907500000	알키드수지	6.5	0	
390760000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6.5	0	
3907700000	폴리(락트산)	6.5	0	
3907910000	불포화의 것	6.5	0	
3907991000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6.5	0	
3907999000	기타	6.5	0	
3908101000	폴리아미드 -6	6.5	0	
3908102000	폴리아미드 -6,6	6.5	0	
3908103000	폴리아미드 -11, -12, -6,9, -6,10, -6,12	6.5	0	
3908900000	기타	6.5	0	
3909101000	요소수지	6.5	0	
3909102000	티오요소수지	6.5	0	
3909200000	멜라민수지	6.5	0	
3909300000	기타 아미노수지	6.5	0	
3909400000	페놀수지	6.5	0	
3909500000	폴리우레탄	6.5	0	
39100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6.5	0	
3910009010	실리콘오일	6.5	0	
3910009020	실리콘고무	6.5	0	
3910009090	기타	6.5	0	
3911101000	석유수지	8	0	
3911102000	쿠마론, 인덴 또는 쿠마론-인덴수지	8	0	
3911103000	폴리테르펜	8	0	
3911901000	폴리술파이드	6.5	0	
3911902000	폴리술폰	6.5	0	
3911903000	푸란수지	6.5	0	
3911909000	기타	6.5	0	
3912110000	가소화하지 아니한 것	5	0	
3912120000	가소화 한 것	5	0	
3912200000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6.5	0	
3912311000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나트륨	6.5	0	
3912319000	기타	6.5	3	
3912391000	메틸셀룰로오스	6.5	3	
3912399000	기타	6.5	0	
3912901000	재생셀룰로오스	6.5	0	
3912909000	기타	6.5	0	
3913101000	알긴산 나트륨	6.5	0	
3913102000	알긴산 프로필렌 글리콜	6.5	0	
3913109000	기타	6.5	0	
3913901000	경화단백질	6.5	0	
3913902010	염화고무	6.5	0	
3913902020	염산고무	6.5	0	
3913902030	산화고무	6.5	0	
3913902040	환화고무	6.5	0	
3913902090	기타	6.5	0	
3913909010	덱스트란	6.5	0	
3913909090	기타	6.5	0	
3914001000	양이온성의 것	6.5	0	
3914009000	기타	6.5	0	
3915101000	제조당시 필름, 쉬트, 판 및 박 상태의 것	6.5	0	
3915102000	제조당시 파이프 및 호스 상태의 것	6.5	0	
3915109000	기타	6.5	0	
391520000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1530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5	0	
3915901000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15902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6.5	0	
3915903000	폴리아세탈수지의 것	6.5	0	
3915904000	폴리카보네이트의 것	6.5	0	
3915905000	폴리아미드의 것	6.5	5	
3915909000	기타	6.5	0	
3916100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1620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5	0	
391690100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16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1690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6.5	0	
3916904000	폴리아미드의 것	6.5	0	
3916909000	기타	6.5	0	
3917101000	경화 단백질의 것	6.5	0	
3917102000	셀룰로오스 물질의 것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917210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1722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1723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5	0	
391729100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17292000	폴리아미드의 것	6.5	0	
3917299000	기타	6.5	0	
3917311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1731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5	0	
3917319000	기타	6.5	0	
3917321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1732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5	0	
3917329000	기타	6.5	0	
3917331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1733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5	0	
3917339000	기타	6.5	0	
3917391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5	3	
391739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5	0	
3917399000	기타	6.5	3	
3917400000	연결구류	6.5	0	
3918101000	폴리염화비닐의 것	6.5	0	
3918102000	염화비닐과 초산비닐의 공중합체의 것	6.5	0	
3918109000	기타	6.5	5	
3918900000	기타 플라스틱의 것	6.5	0	
3919100000	롤상의 것(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6.5	0	
3919900000	기타	6.5	0	
3920100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2020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6.5	3	
392030000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20430000	가소제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 퍼센트 이상인 것	6.5	0	
3920490000	기타	6.5	0	
3920510000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의 것	6.5	0	
3920590000	기타	6.5	0	
3920610000	폴리카보네이트의 것	6.5	0	
39206200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것	6.5	0	
392063000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의 것	6.5	0	
3920690000	기타 폴리에스테르의 것	6.5	0	
3920710000	재생셀룰로오스의 것	6.5	0	
3920730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6.5	0	
392079100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6.5	0	
3920799000	기타	6.5	0	
3920910000	폴리(비닐 부티랄)의 것	6.5	0	
3920920000	폴리아미드의 것	6.5	0	
3920930000	아미노수지의 것	6.5	0	
3920940000	페놀수지의 것	6.5	0	
3920991000	항공기용의 것	6.5	0	
3920999010	폴리이미드 필름(리드프레임의 기능을 하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에 한한다)	4	0	
3920999090	기타	6.5	0	
392111000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2112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5	0	
3921130000	폴리우레탄의 것	6.5	0	
3921140000	재생셀룰로오스의 것	6.5	0	
3921191010	격리막(2 차전지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4	0	
3921191090	기타	6.5	0	
3921192010	격리막(2 차전지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4	0	
3921192090	기타	6.5	0	
3921193010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의 것	6.5	0	
3921193090	기타	6.5	0	
3921194010	폴리카보네이트의 것	6.5	0	
39211940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것	6.5	0	
392119403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의 것	6.5	0	
3921194090	기타	6.5	0	
392119501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6.5	0	
392119502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6.5	0	
3921195090	기타	6.5	0	
3921199010	폴리비닐 부티랄의 것	6.5	0	
3921199020	폴리아미드의 것	6.5	0	
3921199030	아미노수지의 것	6.5	0	
3921199040	페놀수지의 것	6.5	0	
3921199090	기타	6.5	0	
3921901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21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2190300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21904010	경질의 것	6.5	0	
3921904020	연질의 것	6.5	0	
3921905010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의 것	6.5	0	
3921905090	기타	6.5	0	
3921906010	폴리카보네이트의 것	6.5	0	
39219060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것	6.5	0	
392190603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의 것	6.5	0	
3921906090	기타	6.5	0	
3921907010	재생셀룰로오스의 것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926902000	부채 및 핸드스크린(기계식이 아닌 것에 한한다), 이들의 살 및 자루(그러한 살 및 자루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6.5	0	
3926903000	레이블 및 태그	6.5	0	
3926904000	케이스를 갖춘 접착테이프	6.5	0	
3926905000	그림틀, 사진틀, 거울틀 및 이와 유사한 틀	6.5	0	
3926909000	기타	6.5	0	
4001100000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4001211000	알・에스・에스 1 엑스	0	0	
4001212000	알・에스・에스 1 호	0	0	
4001213000	알・에스・에스 2 호	0	0	
4001214000	알・에스・에스 3 호	0	0	
4001215000	알・에스・에스 4 호	0	0	
4001216000	알・에스・에스 5 호	0	0	
4001220000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0	0	
4001290000	기타	0	0	
4001301000	치클검	2	0	
4001309000	기타	2	0	
4002110000	라텍스	8	0	
4002190000	기타	8	0	
4002201000	라텍스	8	0	
4002209000	기타	8	0	
4002311000	라텍스	5	0	
4002319000	기타	5	0	
4002391000	라텍스	5	0	
4002399010	염화부틸고무(CIIR)의 것	5	0	
4002399020	브롬화 부틸고무(BIIR)의 것	5	0	
4002410000	라텍스	8	0	
4002490000	기타	8	0	
4002510000	라텍스	8	0	
4002590000	기타	8	0	
4002601000	라텍스	8	0	
4002609000	기타	8	0	
4002701000	라텍스	8	0	
4002709000	기타	8	0	
4002801000	라텍스	8	0	
4002809000	기타	8	0	
4002910000	라텍스	8	0	
4002991000	카르복시화한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고무(XNBR)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92190702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6.5	0	
392190703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6.5	0	
3921907090	기타	6.5	0	
3921909010	폴리비닐 부티랄의 것	6.5	0	
3921909020	폴리아미드의 것	6.5	0	
3921909030	아미노수지의 것	6.5	0	
3921909040	페놀수지의 것	6.5	0	
3921909050	폴리우레탄의 것	6.5	0	
3921909090	기타	6.5	0	
3922101000	목욕통과 샤워통	6.5	3	
3922102000	세면대	6.5	0	
3922103000	설거지통	6.5	0	
3922200000	변기용 시트와 커버	6.5	0	
3922901000	비데	6.5	0	
3922909000	기타	6.5	0	
3923100000	상자, 케이스, 바구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5	0	
3923210000	에틸렌 중합체의 것	6.5	0	
3923290000	기타 플라스틱의 것	6.5	0	
3923300000	카보이병, 병, 플라스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5	0	
3923400000	스풀, 콥, 보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5	0	
3923500000	뚜껑, 마개, 캡 및 기타 마개류	6.5	0	
3923900000	기타	6.5	0	
392410000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6.5	0	
3924901000	비누접시와 통	6.5	0	
3924902000	탁상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5	0	
3924909000	기타	6.5	0	
3925100000	저장기, 탱크, 배트 및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6.5	0	
3925200000	문, 창과 그들의 틀 및 문지방	6.5	0	
3925300000	셔터, 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6.5	0	
3925900000	기타	6.5	0	
3926101000	필통 및 지우개	6.5	0	
3926102000	바인더 및 앨범	6.5	0	
3926109000	기타	6.5	0	
3926200000	의류 및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한다)	6.5	0	
3926300000	가구, 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6.5	3	
3926400000	소상 및 기타 장식용품	6.5	0	
3926901000	기계용의 부분품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010191000	플라스틱으로만 보강된 것	8	0	
4010199000	기타	8	0	
401031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 초과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에 한한다)	8	0	
401032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 초과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은 제외한다)	8	0	
401033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 초과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에 한한다)	8	0	
401034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 초과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은 제외한다)	8	0	
4010350000	엔드리스 싱크러너스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 초과 150 센티미터 이하인 것	8	0	
4010360000	엔드리스 싱크러너스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 센티미터 초과 198 센티미터 이하인 것	8	0	
4010390000	기타	8	0	
4011101000	래디알 구조의 것	8	0	
4011102000	바이어스 구조의 것	8	0	
4011109000	기타	8	0	
4011201010	림의 지름이 49.53 센티미터 미인인 것	8	0	
4011201090	기타	8	0	
4011202010	림의 지름이 49.53 센티미터 미인인 것	8	0	
4011202090	기타	8	0	
4011209000	기타	8	0	
4011300000	항공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0	
4011400000	모터싸이클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8	0	
4011500000	자전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8	0	
4011610000	농경용 또는 임업용의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8	0	
4011620000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8	0	
4011630000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002992000	아크릴로니트릴 이소프렌고무(NIR)의 것	8	0	
4002993000	티오플라스트(TM)	8	0	
4002999000	기타	8	0	
4003000000	재생고무(일차제품 또는 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8	0	
4004000000	고무의 웨이스트·페어링 및 스크랩(경질고무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분 및 입	3	0	
4005101000	판, 쉬트 및 스트립	8	0	
4005109000	기타	8	0	
4005200000	용액, 분산액(소호 제 4005.10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8	0	
4005910000	판, 쉬트 및 스트립	8	0	
4005991000	배합고무 라텍스	8	0	
4005999000	기타	8	0	
4006100000	고무타이어 재생용의 "캐멀-백" 스트립	8	0	
4006901000	고무봉	8	0	
4006902000	고무관	8	0	
4006903000	고무형재	8	0	
4006904000	고무디스크, 링 및 와셔	8	0	
4006905000	고무사	8	0	
4006909000	기타	8	0	
4007001000	고무사	8	0	
4007002000	고무끈	8	0	
4008111000	보강을 위하여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8	0	
4008119000	기타	8	3	
4008191000	보강을 위하여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8	0	
4008199000	기타	8	0	
4008211000	보강을 위하여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8	0	
4008219000	기타	8	0	
4008291000	보강을 위하여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8	0	
4008299000	기타	8	0	
40091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8	0	
40091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0	
40092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8	0	
40092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0	
40093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8	3	
40093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0	
40094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8	0	
40094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0	
4010110000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8	0	
4010120000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015110000	외과용의 것	8	0	
4015190000	기타	8	5	
4015901000	잠수복	8	0	
4015902000	방사선 방호복	8	3	
4015909000	기타	8	0	
4016100000	셀룰라 고무의 것	8	0	
4016910000	바닥깔개와 매트	8	0	
4016920000	지우개	8	0	
4016930000	개스킷, 와셔 및 기타 실	8	0	
4016940000	보트 또는 도크펜더(팽창성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4016951000	공기 매트리스	8	0	
4016952000	베개	8	0	
4016953000	쿠션	8	0	
4016959000	기타	8	0	
4016991010	기구, 비행선, 비행기계류, 글라이더, 연 및 로토슈트의 부품	0	0	
4016991090	기타	8	0	
4016992000	고무밴드	8	0	
4016993000	병마개	8	0	
4016999000	기타	8	0	
4017001000	경질고무	8	0	
4017002000	경질고무의 제품	8	0	
4101201000	유연처리 하지 아니한 원피	1	0	
41012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5	0	
4101501011	카우하이드	1	0	
4101501012	스티어하이드	1	0	
4101501013	옥스하이드	1	0	
4101501014	불하이드	1	0	
4101501019	기타	1	0	
4101501021	카우하이드	1	0	
4101501022	스티어하이드	1	0	
4101501023	옥스하이드	1	0	
4101501024	불하이드	1	0	
4101501029	기타	1	0	
4101501090	기타	1	0	
41015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5	0	
4101901011	송아지 원피의 것	1	0	
4101901019	기타	1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011690000	기타	8	0	
4011920000	농경용 또는 임업용의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8	0	
4011930000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8	0	
4011940000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4011990000	기타	8	3	
4012110000	승용자동차(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8	0	
4012120000	버스 또는 화물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8	0	
4012130000	항공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0	
4012190000	기타	8	0	
4012201000	항공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0	
4012209010	승용자동차(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8	0	
4012209020	버스 또는 화물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8	3	
4012209090	기타	8	0	
4012901010	솔리드 타이어	5	0	
4012901020	쿠션 타이어	5	0	
4012901030	타이어 트래드	5	0	
4012901040	타이어 플랩	5	0	
4012909010	솔리드 타이어	8	0	
4012909020	쿠션 타이어	8	0	
4012909030	타이어 트래드	8	0	
4012909040	타이어 플랩	8	0	
4012909090	기타	8	0	
4013101000	승용자동차(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8	0	
4013102000	버스 또는 화물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8	0	
4013200000	자전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8	0	
4013901000	항공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0	
4013909010	모터싸이클 또는 모터스쿠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8	0	
4013909020	산업용 차량 또는 농경용 기계류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8	0	
4013909090	기타	8	0	
4014100000	콘돔	8	0	
4014901000	젖꼭지	8	0	
401490900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101901091	송아지 원피의 것	1	0	
4101901099	기타	1	0	
41019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5	0	
4102100000	탈모하지 아니한 것	1	0	
4102211000	유연처리 하지 아니한 원피	1	0	
410221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5	0	
4102291000	유연처리 하지 아니한 원피	1	0	
410229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5	0	
4103201010	뱀의 것	1	0	
4103201020	도마뱀의 것	1	0	
4103201030	악어의 것	1	0	
4103201090	기타	1	0	
41032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5	0	
4103301000	유연처리 하지 아니한 원피	1	0	
41033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5	0	
4103901010	장어류의 것	1	0	
4103901020	캉가루의 것	1	0	
4103901030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의 것	1	0	
4103901090	기타	1	0	
4103902010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의 것	3	0	
4103902090	기타	5	0	
4104110000	스플릿하지 아니한 풀 그레인, 그레인 스플릿	5	0	
4104190000	기타	5	0	
4104410000	스플릿하지 아니한 풀 그레인, 그레인 스플릿	5	0	
4104490000	기타	5	0	
4105100000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5	0	
4105300000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5	0	
4106210000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5	0	
4106220000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5	0	
4106310000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5	0	
4106320000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5	0	
4106400000	파충류의 것	5	0	
4106910000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5	0	
4106920000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5	0	
4107110000	스플릿하지 아니한 풀 그레인	5	0	
4107120000	그레인 스플릿	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107190000	기타	5	0	
4107910000	스플릿하지 아니한 풀 그레인	5	0	
4107920000	그레인 스플릿	5	0	
4107990000	기타	5	0	
4112000000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플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5	0	
4113100000	산양의 것	5	0	
4113200000	돼지의 것	5	0	
4113300000	파충류의 것	5	0	
4113900000	기타	5	0	
4114100000	샤미가죽(콤비네이션 샤미가죽을 포함한다)	5	0	
4114201000	페이턴트 레더	5	0	
4114202000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	5	0	
4114203000	메탈라이즈드 레더	5	0	
4115100000	콤퍼지션 레더(가죽 또는 가죽섬유를 기제로 한 것으로서 슬래브상, 쉬트상 또는 스트립상인 것에 한하며, 롤상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0	
4115200000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의 페어링과 기타 웨이스트(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죽의 더스트, 분	3	0	
4201001000	파충류제의 것	8	0	
4201009010	안장 및 안장용 방석	8	0	
4201009020	고삐줄	8	0	
4201009030	끈	8	0	
4201009040	재갈	8	0	
4201009090	기타	8	0	
4202111010	뱀의 것	8	0	
4202111020	도마뱀의 것	8	0	
4202111030	악어의 것	8	0	
4202111040	장어류의 것	8	0	
4202111050	캉가루의 것	8	0	
4202111090	기타	8	0	
4202112000	콤퍼지션 레더제의 것	8	0	
4202113000	페이턴트 레더제의 것	8	0	
4202121010	폴리염화비닐의 것	8	0	
4202121020	폴리우레탄의 것	8	0	
4202121090	기타	8	0	
4202122000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8	0	
4202191000	판지제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202991000	판지제의 것	8	0	
4202999000	기타	8	3	
4203101010	코트류	13	0	
4203101020	재킷, 블레이저 및 잠바류	13	0	
4203101050	조끼류	13	0	
4203101060	바지류	13	0	
4203101070	스커트류	13	0	
4203101080	오버롤류	13	0	
4203101090	기타	13	0	
4203102010	코트류	13	0	
4203102020	재킷, 블레이저 및 잠바류	13	0	
4203102050	조끼류	13	0	
4203102060	바지류	13	0	
4203102070	스커트류	13	0	
4203102080	오버롤류	13	0	
4203102090	기타	13	0	
4203103010	코트류	13	0	
4203103020	재킷, 블레이저 및 잠바류	13	0	
4203103050	조끼류	13	0	
4203103060	바지류	13	0	
4203103070	스커트류	13	0	
4203103080	오버롤류	13	0	
4203103090	기타	13	0	
4203109010	코트류	13	0	
4203109020	재킷, 블레이저 및 잠바류	13	0	
4203109050	조끼류	13	0	
4203109060	바지류	13	0	
4203109070	스커트류	13	0	
4203109080	오버롤류	13	0	
4203109090	기타	13	0	
4203211000	야구장갑	13	0	
4203212000	골프장갑	13	0	
4203213000	스키장갑	13	0	
4203214000	모터싸이클장갑	13	0	
4203215000	배팅장갑	13	0	
4203216000	테니스장갑	13	0	
4203217000	아이스하키장갑	13	0	
4203219000	기타	13	0	
4203291000	작업용 장갑	13	0	
4203292000	방한용 장갑	13	0	
4203293000	운전용 장갑	1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202199000	기타	8	0	
4202211010	뱀의 것	8	0	
4202211020	도마뱀의 것	8	0	
4202211030	악어의 것	8	0	
4202211040	장어류의 것	8	0	
4202211050	캉가루의 것	8	0	
4202211090	기타	8	0	
4202212000	콤퍼지션 레더제의 것	8	0	
4202213000	페이턴트 레더제의 것	8	0	
4202221010	폴리염화비닐의 것	8	0	
4202221020	폴리우레탄의 것	8	0	
4202221090	기타	8	0	
4202222000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8	0	
4202291000	판지제의 것	8	0	
4202299000	기타	8	0	
4202311010	뱀의 것	8	0	
4202311020	도마뱀의 것	8	0	
4202311030	악어의 것	8	0	
4202311040	장어류의 것	8	0	
4202311050	캉가루의 것	8	0	
4202311090	기타	8	0	
4202312000	콤퍼지션 레더제의 것	8	0	
4202313000	페이턴트 레더제의 것	8	0	
4202321010	폴리염화비닐의 것	8	0	
4202321020	폴리우레탄의 것	8	0	
4202321090	기타	8	0	
4202322000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8	0	
4202391000	판지제의 것	8	0	
4202399000	기타	8	0	
4202911010	뱀의 것	8	0	
4202911020	도마뱀의 것	8	0	
4202911030	악어의 것	8	0	
4202911040	장어류의 것	8	0	
4202911050	캉가루의 것	8	0	
4202911090	기타	8	0	
4202912000	콤퍼지션 레더제의 것	8	0	
4202913000	페이턴트 레더제의 것	8	0	
4202921010	폴리염화비닐의 것	8	0	
4202921020	폴리우레탄의 것	8	0	
4202921090	기타	8	0	
4202922000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203299000	기타	13	0	
4203301010	뱀의 것	13	0	
4203301020	도마뱀의 것	13	0	
4203301030	악어의 것	13	0	
4203301040	장어류의 것	13	0	
4203301090	기타	13	0	
4203309000	기타	13	0	
4203400000	기타의 의류부속품	13	0	
4205001110	벨트	8	0	
4205001190	기타	8	0	
4205001900	기타의 가죽제품	8	3	
4205002110	벨트	8	0	
4205002190	기타	8	0	
4205002900	기타의 콤퍼지션 레더제품	8	0	
4206001000	캣거트	8	0	
4206009000	기타	8	0	
4301100000	밍크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3	3	
430130000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브로드테일·카라쿨·페르시아 및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중국·몽고 또는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3	3	
4301600000	여우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3	3	
4301801000	친칠라의 것	3	3	
4301802000	오파섬의 것	3	3	
4301803000	라쿤의 것	3	3	
4301804000	코요테의 것	3	3	
4301805000	토끼의 것	3	3	
4301806000	사향뒤쥐의 것	3	3	
4301809000	기타	3	3	
4301900000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3	3	
4302110000	밍크의 것	5	0	
4302191000	해리의 것	5	0	
4302192000	사향뒤쥐의 것	5	0	
4302193000	여우의 것	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302195000	친칠라의 것	5	0	
4302196000	오파섬의 것	5	0	
4302197000	라쿤의 것	5	0	
4302198000	코요테의 것	5	0	
4302199010	면양의 것	5	0	
430219902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브로드테일·카라쿨·페르시아 및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중국·몽고 또는 티베트 어린 양의 것에 한한다)	5	0	
4302199090	기타	5	0	
4302201000	밍크의 것	5	0	
4302202000	토끼의 것	5	0	
4302203000	해리의 것	5	0	
4302204000	사향뒤쥐의 것	5	0	
4302205000	여우의 것	5	0	
4302207000	친칠라의 것	5	0	
4302209010	오파섬의 것	5	0	
4302209020	라쿤의 것	5	0	
4302209030	코요테의 것	5	0	
4302209090	기타	5	0	
4302300000	전신모피 및 그 조각 또는 절단품(조합한 것에 한한다)	5	0	
4303101100	밍크의 것	16	0	
4303101200	토끼의 것	16	0	
4303101300	어린 양의 것	16	0	
4303101400	해리의 것	16	0	
4303101500	사향뒤쥐의 것	16	0	
4303101600	여우의 것	16	0	
4303101800	친칠라의 것	16	0	
4303101910	오파섬의 것	16	0	
4303101920	라쿤의 것	16	0	
4303101930	코요테의 것	16	0	
4303101990	기타	16	0	
4303102100	밍크의 것	16	0	
4303102200	토끼의 것	16	0	
4303102300	어린 양의 것	16	0	
4303102400	해리의 것	16	0	
4303102500	사향뒤쥐의 것	16	0	
4303102600	여우의 것	16	0	
4303102800	친칠라의 것	16	0	
4303102910	오파섬의 것	16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303102920	라쿤의 것	16	0	
4303102930	코요테의 것	16	0	
4303102990	기타	16	0	
4303900000	기타	16	7	
4304001000	인조모피	8	0	
4304002000	인조모피의 제품	8	0	
4401100000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가지, 다발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2	3	
4401210000	침엽수류	2	3	
4401221000	펄프 제조용의 것	0	0	
4401229000	기타	2	3	
4401301000	목재 펠리트	2	0	
4401309000	기타	2	3	
4402101000	성형목탄	2	3	
4402109000	기타	2	3	
4402901000	성형목탄	2	3	
4402909000	기타	2	3	
4403101000	열대산 목재	0	0	
4403102000	활엽수	0	0	
4403109000	침엽수	0	0	
4403201000	삼나무	0	0	
4403202010	더글러스퍼	0	0	
4403202020	헴록	0	0	
4403203000	적송	0	0	
4403204000	전나무	0	0	
4403205000	낙엽송	0	0	
4403207000	가문비나무	0	0	
4403208000	라디에타소나무	0	0	
4403209000	기타	0	0	
4403410000	다크레드메란티, 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0	0	
4403491000	화이트라왕, 화이트메란티, 화이트세라야, 옐로메란티 및 아란	0	0	
4403492010	티크	0	0	
4403492020	케루잉	0	0	
4403492030	카쥴	0	0	
4403492040	제루통	0	0	
4403492090	기타	0	0	
4403493000	오꾸메, 오베체, 사팰리, 시뽀, 아까쥬다푸리케, 마코레 및 이로코	0	0	
4403494000	티아마, 만소니아, 이롬바, 디베토우, 림바 및 아조베	0	0	
4403495000	마호가니 및 발사	0	0	
4403499000	기타	0	0	
4403910000	참나무(코커스종)의 것	0	0	
4403920000	너도밤나무(파구스종)의 것	0	0	
4403991010	자단	0	0	
4403991020	흑단	0	0	
4403991040	물푸레나무	0	0	
4403991050	호도나무	0	0	
4403991090	기타	0	0	
4403992000	리그넘바이트	0	0	
4403993010	사시나무	0	0	
4403993020	포플러	0	0	
4403993030	단풍나무	0	0	
4403993040	느릅나무	0	0	
4403993050	자작나무	0	0	
4403993060	피나무	0	0	
4403994000	오동나무	0	0	
4403999011	말라스	0	0	
4403999012	타운	0	0	
4403999019	기타	0	0	
4403999090	기타	0	0	
4404102000	목재의 봉	5	5	
4404109000	기타	5	5	
4404202000	목재의 봉	5	5	
4404209000	기타	5	5	
4405000000	목모, 목분	5	5	
4406100000	주약처리하지 아니한 것	5	5	
4406900000	기타	5	5	
4407101000	삼나무	5	7	
4407102000	미송	5	7	
4407103000	적송	5	7	
4407104000	전나무	5	7	
4407105000	낙엽송	5	7	
4407107000	가문비나무	5	7	
4407108000	라디에타소나무	5	7	
4407109000	기타	5	7	
4407210000	마호가니(스웨테니아종)	5	7	
4407220000	비롤라, 임부아 및 발사	5	7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407250000	다크레드메란티, 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5	7	
4407260000	화이트라왕, 화이트메란티, 화이트세라야, 옐로메란티 및 아란	5	7	
4407270000	사팰리	5	7	
4407280000	이로코	5	7	
4407291000	케루잉, 라민, 카풀, 종콩, 멜바우, 제루퉁 및 켐파스	5	7	
4407292000	티크	5	7	
4407293000	오꾸메 · 오베체 · 시뽀 · 아까쥬다푸리케 · 마코레 · 티아마 · 만소니아 · 이롬바 · 디베토우 림바 및 아조베	5	7	
4407299000	기타	5	7	
4407910000	참나무(코커스종)의 것	5	7	
4407920000	너도밤나무(파구스종)의 것	5	7	
4407930000	단풍나무(아세르종)의 것	5	7	
4407940000	체리나무(프루누스종)의 것	5	7	
4407950000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종)의 것	5	7	
4407991010	자단	5	7	
4407991020	흑단	5	7	
4407991040	호도나무	5	7	
4407991090	기타	5	7	
4407992000	리그넘바이트	5	7	
4407993010	사시나무	5	7	
4407993020	포플러	5	7	
4407993040	느릅나무	5	7	
4407993050	자작나무	5	7	
4407993060	피나무	5	7	
4407994000	오동나무	5	7	
4407999010	열대산 목재(앞에서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5	7	
4407999090	기타	5	7	
4408106000	적층목재품을 평삭한 베니어용의 것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의 것	8	5	
4408109100	합판 제조용의 것	3	0	
4408109200	무늬목	3	5	
4408109910	삼나무	5	5	
4408109920	미송	5	5	
4408109930	적송	5	5	
4408109940	전나무	5	5	
4408109950	낙엽송	5	5	
4408109960	가문비나무	5	5	
4408109970	라디에타소나무	5	5	
4408109990	기타	5	5	
4408313000	적층목재품을 평삭한 베니어용의 것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의 것	8	5	
4408319011	합판 제조용의 것	3	0	
4408319012	무늬목	3	5	
4408319019	기타	5	5	
4408319021	합판 제조용의 것	3	0	
4408319022	무늬목	3	5	
4408319029	기타	5	5	
4408396000	적층목재품을 평삭한 베니어용의 것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의 것	8	5	
4408399011	합판 제조용의 것	3	0	
4408399012	무늬목	3	5	
4408399019	기타	5	5	
4408399021	합판 제조용의 것	3	0	
4408399022	무늬목	3	5	
4408399029	기타	5	5	
4408399031	합판 제조용의 것	3	0	
4408399032	무늬목	3	5	
4408399039	기타	5	5	
4408399041	합판 제조용의 것	3	0	
4408399042	무늬목	3	5	
4408399049	기타	5	5	
4408399051	합판 제조용의 것	3	0	
4408399052	무늬목	3	5	
4408399059	기타	5	5	
4408399091	합판 제조용의 것	3	0	
4408399092	무늬목	3	5	
4408399099	기타	5	5	
4408901000	적층목재품을 평삭한 베니어용의 것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의 것	8	5	
4408909150	합판 제조용의 것	3	0	
4408909160	무늬목	3	5	
4408909191	자단	5	5	
4408909192	흑단	5	5	
4408909193	물푸레나무	5	5	
4408909194	호도나무	5	5	
4408909195	참나무	5	5	
4408909199	기타	5	5	
4408909210	합판 제조용의 것	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408909220	무늬목	3	5	
4408909290	기타	5	5	
4408909370	합판 제조용의 것	3	0	
4408909380	무늬목	3	5	
4408909391	사시나무	5	5	
4408909392	포플러	5	5	
4408909393	단풍나무	5	5	
4408909394	느릅나무	5	5	
4408909395	자작나무	5	5	
4408909396	피나무	5	5	
4408909410	합판 제조용의 것	3	0	
4408909420	무늬목	3	5	
4408909490	기타	5	5	
4408909912	합판 제조용의 것	3	0	
4408909913	무늬목	3	5	
4408909914	바보엔	5	5	
4408909919	기타	5	5	
4408909991	합판 제조용의 것	3	0	
4408909992	무늬목	3	5	
4408909999	기타	5	5	
4409100000	침엽수류	8	12	
4409210000	대나무제의 것	8	12	
4409290000	기타	8	12	
4410111000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	8	E	
4410112000	멜라민을 침투한 종이로 표면을 피복한 것	8	15	
4410113000	장식용 플라스틱라미네이트로 표면을 피복한 것	8	15	
4410119000	기타	8	15	
4410121000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	8	15	
4410129000	기타	8	15	
4410191010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	8	15	
4410191090	기타	8	15	
4410199010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	8	15	
4410199020	멜라민을 침투한 종이로 표면을 피복한 것	8	15	
4410199030	장식용 플라스틱라미네이트로 표면을 피복한 것	8	15	
4410199090	기타	8	15	
4410900000	기타	8	15	
4411121000	기계적 가공 또는 표면 피복을 하지 아니한 것	8	12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411122000	기계적 가공을 하거나 표면을 피복한 것	8	10	
4411129000	기타	8	10	
4411131000	기계적 가공 또는 표면 피복을 하지 아니한 것	8	12	
4411132000	기계적 가공을 하거나 표면을 피복한 것	8	10	
4411139000	기타	8	10	
4411141000	기계적 가공 또는 표면 피복을 하지 아니한 것	8	12	
4411142010	마루판	8	15	
4411142090	기타	8	10	
4411149000	기타	8	10	
4411921000	기계적 가공 또는 표면 피복을 하지 아니한 것	8	12	
4411922010	마루판	8	15	
4411922090	기타	8	10	
4411929000	기타	8	10	
4411931000	기계적 가공 또는 표면 피복을 하지 아니한 것	8	12	
4411932010	마루판	8	15	
4411932090	기타	8	10	
4411939000	기타	8	10	
4411941000	기계적 가공 또는 표면 피복을 하지 아니한 것	8	12	
4411949000	기타	8	10	
4412101010	두께가 6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0	
4412101020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	8	10	
4412102000	마루판	8	10	
4412109010	전체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각 플라이의 두께가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10	
4412109090	기타	8	10	
4412311000	두께가 3.2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0	
4412312000	두께가 3.2 밀리미터 이상 4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0	
4412313000	두께가 4 밀리미터 이상 6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0	
4412314000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12	
4412315000	두께가 10 밀리미터 이상 12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E	
4412316000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상 15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E	
4412317000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12	
4412321000	두께가 3.2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0	
4412322000	두께가 3.2 밀리미터 이상 4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0	
4412323000	두께가 4 밀리미터 이상 6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0	
4412324000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12	
4412325000	두께가 10 밀리미터 이상 12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E	
4412326000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상 15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E	
4412327000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12	
4412391010	두께가 6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0	
4412391090	기타	10	12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4412399010	두께가 6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0	
4412399090	기타	10	12	
4412941000	블록보드	8	10	
4412942000	라민보드	8	10	
4412943000	배튼보드	8	10	
4412991011	전체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각 플라이의 두께가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12	
4412991019	기타	8	12	
4412991021	전체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각 플라이의 두께가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12	
4412991029	기타	8	12	
4412991031	전체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각 플라이의 두께가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12	
4412991039	기타	8	12	
4412991041	마루판(전체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각 플라이의 두께가 6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0	12	
4412991042	마루판(기타의 것에 한한다)	8	12	
4412991043	기타(전체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각 플라이의 두께가 6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0	12	
4412991049	기타	8	12	
4412992010	전체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각 플라이의 두께가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12	
4412992090	기타	8	12	
4412993010	전체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각 플라이의 두께가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12	
4412993090	기타	8	12	
4412999111	전체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각 플라이의 두께가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E	
4412999119	기타	8	12	
4412999191	전체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각 플라이의 두께가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12	
4412999199	기타	8	12	
4412999211	전체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각 플라이의 두께가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E	
4412999219	기타	8	12	
4412999291	전체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각 플라이의 두께가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12	
4412999299	기타	8	12	
4413000000	고밀도화 목재(블록상, 플레이트상, 스트립상 또는 프로파일형상의 것에 한한다)	8	1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4414000000	목제의 그림틀, 사진틀, 거울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8	10	
4415100000	케이스·상자·크레이트·드럼 및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블드럼	8	10	
4415200000	페렛·박스페렛 및 기타의 깔판류, 페렛칼러	8	10	
4416000000	목제의 통, 배럴, 베트, 텁 및 기타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 및 준재를 포함한다)	8	10	
4417000000	목제의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 또는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 신발의 목제골	8	10	
4418100000	창, 프랑스 창 및 그들의 틀	8	10	
4418200000	문과 문틀 및 문지방	8	10	
4418400000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의 거푸집널	8	10	
4418500000	지붕이는 판자	8	10	
4418600000	기둥 및 들보	8	10	
4418711000	파아켓트패널	8	10	
4418719000	기타	8	10	
4418721000	파아켓트패널	8	10	
4418729000	기타	8	10	
4418791000	파아켓트패널	8	10	
4418799000	기타	8	10	
4418901000	셀룰라우드패널	8	10	
4418909000	기타	8	10	
4419001000	대접(공기)	8	10	
4419002010	대나무제의 것	8	10	
4419002090	기타	8	10	
4419009000	기타	8	10	
4420101000	조상	8	10	
4420109000	기타	8	10	
4420901000	마르퀘트리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8	10	
4420902010	담배상자	8	10	
4420902020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8	10	
4420902030	제 94 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 가구	8	10	
4420902090	기타	8	10	
4420909010	담배,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8	10	
4420909020	제 94 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 가구	8	10	
4420909090	기타	8	10	
4421100000	옷걸이	8	10	
4421901010	보빈	8	10	
4421901090	기타	8	10	
4421902000	성냥개비의 나무, 신발용의 나무 못	8	10	
4421903000	이쑤시개	8	1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703110000	침엽수류의 것	0	0	
4703190000	활엽수류의 것	0	0	
4703211000	반표백한 것	0	0	
4703212000	표백한 것	0	0	
4703291000	반표백한 것	0	0	
4703292000	표백한 것	0	0	
4704110000	침엽수류의 것	0	0	
4704190000	활엽수류의 것	0	0	
4704210000	침엽수류의 것	0	0	
4704290000	활엽수류의 것	0	0	
4705000000	기계적 및 화학적 펄핑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0	0	
4706100000	면린터펄프	0	0	
4706200000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0	0	
4706301000	기계펄프	0	0	
4706302000	화학펄프	0	0	
4706303000	반화학펄프	0	0	
470691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0	0	
4706912000	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0	0	
470692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0	0	
4706922000	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0	0	
470693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0	0	
4706932000	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0	0	
4707100000	표백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 또는 판지나 파형지 또는 판지의 것	0	0	
4707200000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기타의 지 또는 판지의 것(전체를 착색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4707300000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 등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지 또는 판지의 것	0	0	
4707900000	기타(선별하지 아니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0	0	
4801000000	신문용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0	0	
4802100000	수제지와 판지	0	0	
4802200000	사진감광성·열 감응성 또는 전자 감광성 지 또는 판지용 기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지와 판지	0	0	
4802400000	벽지용의 원지	0	0	
4802541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41090	기타	0	0	
4802549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49090	기타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421904000	포장용의 목재블록	8	10	
4421905000	부채 및 핸드스크린(기계식이 아닌 것에 한한다), 이들의 살 및 자루(그러한 살 및 자루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8	10	
4421909000	기타	8	10	
4501100000	천연코르크(조상의 것 또는 단순히 가공한 것에 한한다)	8	10	
4501900000	기타	8	10	
4502000000	천연코르크[외피를 제거한 것 또는 거칠게 각을 만든 것,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상·판상·쉬트상이나 스트립상의 것에 한하고, 각이 예리한 마개용의 블랭크를 포함한다]	8	10	
4503100000	마개	8	10	
4503900000	기타	8	10	
4504100000	블록·판·쉬트 및 스트립, 타일(형상을 불문한다), 솔리드실린더(디스크를 포함한다)	8	10	
4504900000	기타	8	10	
4601211000	매트류	8	0	
4601212000	발	8	0	
4601221000	매트류	8	0	
4601222000	발	8	0	
4601291000	매트류	8	0	
4601292000	발	8	0	
4601921000	은죽발장(폭이 35 센티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8	0	
4601929000	기타	8	0	
4601930000	등나무제의 것	8	0	
4601941000	은죽발장(폭이 35 센티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8	0	
4601949000	기타	8	0	
4601991000	플라스틱재료로 엮은 쉬트상의 물품	8	0	
4601999000	기타	8	0	
4602111000	바구니	8	10	
4602112000	쟁반, 접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 또는 식탁용품	8	10	
4602119000	기타	8	10	
4602120000	등나무제의 것	8	10	
4602191000	골풀제품	8	0	
4602199000	기타	8	0	
4602900000	기타	8	0	
470100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0	0	
4701002000	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0	0	
4702000000	화학목재펄프(용해용의 것에 한한다)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802621030	전산용지와 폼용지(컴퓨터용지 및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4802621040	팬시지	0	0	
4802621090	기타	0	0	
4802629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29090	기타	0	0	
4802691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91020	복사용지	0	0	
4802691030	전산용지와 폼용지(컴퓨터용지 및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4802691040	팬시지	0	0	
4802691090	기타	0	0	
4802699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99090	기타	0	0	
4803001000	화장지 또는 안면용 티슈스톡(가정용 또는 위생용의 것에 한한다)	0	0	
4803002000	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	0	0	
4803009000	기타	0	0	
48041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0	0	
4804190000	기타	0	0	
48042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0	0	
4804290000	기타	0	0	
4804311000	전기절연지와 판지	0	0	
4804312000	콘덴사지와 판지	0	0	
4804313000	포장지와 판지	0	0	
4804319000	기타	0	0	
4804391000	전기절연지와 판지	0	0	
4804392000	콘덴사지와 판지	0	0	
4804393000	포장지와 판지	0	0	
4804399000	기타	0	0	
480441101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미만인 것	0	0	
4804411090	기타	0	0	
480441901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미만인 것	0	0	
4804419090	기타	0	0	
4804421010	밀크카톤 및 기타 음료용기용 원지	0	0	
4804421020	접는 카톤용원지(화장품·의약품·담배포장 및 이와 유사한 것용을 포함한다)	0	0	
4804421030	쟁반, 접시, 플레이트, 컵 및 이와 유사한 것용 원지	0	0	
4804421090	기타	0	0	
4804429010	밀크카톤 및 기타 음료용기용 원지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802551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51020	복사용지	0	0	
4802551030	전산용지와 폼용지(컴퓨터용지 및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4802551040	팬시지	0	0	
4802551090	기타	0	0	
4802559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59090	기타	0	0	
4802561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61020	복사용지	0	0	
4802561030	전산용지와 폼용지(컴퓨터용지 및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4802561040	팬시지	0	0	
4802561090	기타	0	0	
4802569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69090	기타	0	0	
4802571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71020	복사용지	0	0	
4802571030	전산용지와 폼용지(컴퓨터용지 및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4802571040	팬시지	0	0	
4802571090	기타	0	0	
4802579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79090	기타	0	0	
4802581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81020	팬시지	0	0	
4802581090	기타	0	0	
4802582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82090	기타	0	0	
4802589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89090	기타	0	0	
4802611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11020	복사용지	0	0	
4802611030	전산용지와 폼용지(컴퓨터용지 및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4802611040	팬시지	0	0	
4802611090	기타	0	0	
4802619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19090	기타	0	0	
4802621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21020	복사용지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804429020	접는 카톤용원지(화장품·의약품·담배포장 및 이와 유사한 것용을 포함한다)	0	0	
4804429030	쟁반, 접시, 플레이트, 컵 및 이와 유사한 것용 원지	0	0	
4804429090	기타	0	0	
4804491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미만인 것	0	0	
4804499000	기타	0	0	
48045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0	0	
4804521000	밀크카톤 및 기타 음료용기용 원지	0	0	
4804522000	접는 카톤용원지(화장품·의약품·담배포장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	0	
4804523000	쟁반, 접시, 플레이트, 컵 및 이와 유사한 것용 원지	0	0	
4804529000	기타	0	0	
4804590000	기타	0	0	
4805110000	반화학 후로팅지	0	0	
4805120000	스트로 후로팅지	0	0	
4805190000	기타	0	0	
480524100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5249000	기타	0	0	
480525100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5259000	기타	0	0	
4805300000	아황산포장지	0	0	
4805400000	여과지와 판지	0	0	
4805500000	펠트지와 판지	0	0	
480591100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5919010	콘덴사지와 판지	0	0	
4805919090	기타	0	0	
480592100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5929000	기타	0	0	
480593100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5939000	기타	0	0	
4806100000	황산지	0	0	
4806200000	내지지	0	0	
4806300000	트래싱지	0	0	
4806401000	그라신지	0	0	
4806409000	기타	0	0	
4807000000	겹붙인 지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룰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한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808100000	파형의 지와 판지(천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4808200000	지대용 크라프트지(축유한 것으로서 압형 또는 천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4808300000	기타의 크라프트지(축유한 것으로서 압형 또는 천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4808900000	기타	0	0	
4809201000	한겹의 것	0	0	
4809202000	두겹 이상의 것	0	0	
4809901000	전사지	0	0	
480990201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 그램 이상인 것	0	0	
4809902090	기타	0	0	
4809903000	인쇄용 제판용지	0	0	
4809904000	카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복사지	0	0	
4809909000	기타	0	0	
4810131000	인쇄용 또는 필기용 지와 판지	0	0	
4810139000	기타	0	0	
4810141000	인쇄용 또는 필기용 지와 판지	0	0	
4810149000	기타	0	0	
4810191000	인쇄용 또는 필기용 지와 판지	0	0	
4810199000	기타	0	0	
4810220000	경량(輕量)의 도포한 지	0	0	
4810290000	기타	0	0	
4810311000	접는 카톤용원지(화장품·의약품·담배포장 및 이와 유사한 것용을 포함한다)	0	0	
4810312000	쟁반, 접시, 플레이트, 컵 및 이와 유사한 것용 원지	0	0	
4810319000	기타	0	0	
4810321000	접는 카톤용원지(화장품·의약품·담배포장 및 이와 유사한 것용을 포함한다)	0	0	
4810322000	쟁반, 접시, 플레이트, 컵 및 이와 유사한 것용 원지	0	0	
4810329000	기타	0	0	
4810390000	기타	0	0	
481092101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0 그램 이하인 것	0	0	
4810921090	기타	0	0	
4810922000	아이보리판지	0	0	
4810929000	기타	0	0	
4810991000	지형지	0	0	
4810992000	여과지	0	0	
4810999000	기타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4811101000	루핑지	0	0	
4811109000	기타	0	0	
4811410000	셀프접착지	0	0	
4811490000	기타	0	0	
4811511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초과 265 그램 이하인 것	0	0	
481151901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깔개	0	0	
4811519019	기타	0	0	
4811519090	기타	0	0	
4811590000	기타	0	0	
4811600000	왁스·파라핀왁스·스테아린·유 또는 글리세롤을 도포·침투 또는 피복한 지와 판지	0	0	
4811901010	괘선, 선 또는 방안선을 그은 것	0	0	
4811901090	기타	0	0	
4811902010	셀룰로오스워딩	0	0	
4811902090	기타	0	0	
4812000000	제지용 펄프제의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및 필터플레이트	0	0	
4813100000	소책자상 또는 튜브상의 것	0	0	
4813200000	폭이 5 센티미터 이하의 롤상의 것	0	0	
4813900000	기타	0	0	
4814100000	"인그레인"지	0	0	
4814201000	벽지	0	0	
4814202000	린크라스타	0	0	
4814209000	기타	0	0	
4814901010	갈포섬유제의 것	0	0	
4814901090	기타	0	0	
4814909000	기타	0	0	
4816201000	한겹의 것	0	0	
4816202000	두겹 이상의 것	0	0	
4816901000	전사지	0	0	
481690201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 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4816902090	기타	0	0	
4816903000	인쇄용 제판용지	0	0	
4816904000	카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복사지	0	0	
4816905000	등사원지	0	0	
4816909000	기타	0	0	
4817100000	봉투	0	0	
4817200000	봉함엽서, 우편엽서 및 통신용카드	0	0	
4817300000	지 또는 판지제의 상자·낭대 및 필기첩(안에 지제 문구류가 있는 것에 한한다)	0	0	
4818100000	화장지	0	0	
4818200000	지제의 손수건, 크렌싱티슈 또는 안면용 화장지 및 타올	0	0	
4818300000	책상보 및 서비에트	0	0	
4818401000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	0	0	
4818409000	기타	0	0	
4818500000	의류 및 의류부속품	0	0	
4818900000	기타	0	0	
4819100000	지제 또는 판지제의 상자류(골판지제의 것에 한한다)	0	0	
4819200000	지제 또는 판지제의 접는 상자류(골판지제의 것은 제외한다)	0	0	
4819300000	폭이 40 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	0	0	
4819400000	기타 포장대(콘을 포함한다)	0	0	
4819501000	액체포장에 적합한 것	0	0	
4819509000	기타	0	0	
4819600000	서류상자, 서류받침, 보관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 상점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	0	0	
4820100000	장부, 회계부, 노트북, 주문장, 영수장, 편지지철, 메모철, 일기장 및 이와 유사한 물품	0	0	
4820200000	연습장	0	0	
4820300000	바인더(책표지는 제외한다), 폴더 및 서철표지	0	0	
4820400000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삽입식 카본세트	0	0	
4820500000	견본용 또는 수집용의 앨범	0	0	
4820900000	기타	0	0	
4821100000	인쇄한 것	0	0	
4821900000	기타	0	0	
4822100000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데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0	
4822900000	기타	0	0	
4823200000	여과용의 지와 판지	0	0	
4823400000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 쉬트 및 다이알	0	0	
4823610000	대나무제의 것	0	0	
4823690000	기타	0	0	
4823700000	제지용 펄프제의 몰드 또는 압형한 제품	0	0	
4823901010	천공된 카드	0	0	
4823901090	기타	0	0	
4823902000	전기절연지	0	0	
482390301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깔개	0	0	
4823903019	기타	0	0	
482390302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깔개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823903029	기타	0	0	
4823903090	기타	0	0	
4823905000	자카드 직기용의 천공지	0	0	
482390901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깔개	0	0	
4823909019	기타	0	0	
4823909090	기타	0	0	
4901101000	국문판	0	0	
4901109000	기타	0	0	
4901911000	국문판	0	0	
4901919000	기타	0	0	
4901991000	국문판	0	0	
4901999000	기타	0	0	
4902101010	신문	0	0	
4902101090	기타	0	0	
4902109000	기타	0	0	
4902901010	잡지	0	0	
4902901090	기타	0	0	
4902909010	잡지	0	0	
4902909090	기타	0	0	
4903000000	아동용의 그림책, 습화책	0	0	
4904000000	악보(인쇄 또는 수제의 것으로서 제본되었거나 그림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4905100000	지구의	0	0	
4905911000	지도와 해도	0	0	
4905919000	기타	0	0	
4905990000	기타	0	0	
4906001000	설계도	0	0	
4906002000	도안	0	0	
4906009000	기타	0	0	
4907001000	우표(사용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4907002000	항공화물증권	0	0	
4907009000	기타	0	0	
4908100000	전사지(디칼커매니어)로서 유리화 할 수 있는 것	0	0	
4908901000	전사지(디칼커매니어)로서 쿠션 후로링 쉬트용의 것	0	0	
4908909000	기타	0	0	
4909000000	인쇄된 엽서 또는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 또는 안내용의 것으로서 그림·봉투 또는 장식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4910001000	지제 또는 판지제의 것	0	0	
4910009000	기타	0	0	
4911100000	광고선전물, 상업용 카다로그 및 이와 유사한 것	0	0	
4911911000	인쇄된 설계도와 도안	0	0	
4911919000	기타	0	0	
4911990000	기타	0	0	
50010000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것에 한한다)	51 퍼센트 또는 5,276 원/kg, 양자중 고액(율)	10	
5002001010	20 데시텍스 이하인 것	3	10	
5002001020	20 데시텍스 초과 25.56 데시텍스 이하인 것	51.7 퍼센트 또는 17,215 원/kg, 양자중 고액(율)	10	
5002001030	25.56 데시텍스 초과 28.89 데시텍스 이하인 것	51.7 퍼센트 또는 17,215 원/kg, 양자중 고액(율)	10	
5002001040	28.89 데시텍스 초과 36.67 데시텍스 이하인 것	51.7 퍼센트 또는 17,215 원/kg, 양자중 고액(율)	10	
5002001050	36.67 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51.7 퍼센트 또는 17,215 원/kg, 양자중 고액(율)	10	
5002002000	옥사	3	3	
5002009000	기타	8	3	
5003001100	누에고치 웨이스트	2	0	
5003001200	풀솜	2	0	
5003001300	비수	2	0	
5003001400	샘피저	2	0	
5003001900	기타	2	0	
5003009100	페니	2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5003009200	견노일(부렛)	2	0	
5003009900	기타	2	0	
5004000000	견사(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8	0	
5005001000	견수방사	8	0	
5005002000	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	8	0	
5005003000	견방주사	8	0	
5006001000	견사	8	0	
5006002000	견수방사	8	0	
5006003000	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	8	0	
5006004000	견방주사	8	0	
5006005000	누에의 거트	8	0	
5007100000	견 노일직물	13	0	
5007201000	생지견직물	13	0	
5007202010	훌치기가공	13	0	
5007202020	사틴	13	0	
5007202030	크렙데신	13	0	
5007202090	기타	13	0	
5007209000	기타	13	0	
5007901000	생지견직물	13	0	
5007902000	아세테이트사와 혼방한 견직물	13	0	
5007903000	기타 인조섬유와 혼방한 견직물	13	0	
5007904000	양모와 혼방한 견직물	13	0	
5007909000	기타	13	0	
5101110000	깎은 양모	0	0	
5101190000	기타	0	0	
5101210000	깎은 양모	0	0	
5101290000	기타	0	0	
5101300000	탄화처리한 것	0	0	
51021100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0	0	
5102190000	기타	0	0	
5102200000	조수모	0	0	
5103100000	양모 또는 섬수모의 노일	0	0	
5103200000	양모 또는 섬수모의 기타 웨이스트	0	0	
5103300000	조수모의 웨이스트	0	0	
5104000000	양모 또는 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가아넷스톡	0	0	
5105100000	카드한 양모	0	0	
5105210000	코움한 양모(단편상의 것에 한한다)	0	0	
5105291000	순모울톱	0	0	
5105292000	혼방울톱	0	0	
5105293000	조사	0	0	
5105299000	기타	0	0	
51053100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0	0	
5105390000	기타	0	0	
5105400000	조수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한다)	0	0	
5106101000	순모의 것	8	0	
5106109000	기타	8	0	
5106201000	폴리에스테르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6202000	폴리아미드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6203000	아크릴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6204000	기타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6209000	기타	8	0	
5107101000	순모의 것	8	0	
5107102000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7109000	기타의 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7201000	폴리에스테르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7202000	폴리아미드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7203000	아크릴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7204000	기타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7209000	기타의 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8100000	카드한 것	8	0	
5108200000	코움한 것	8	0	
5109101000	양모사	8	0	
5109109000	섬수모사	8	0	
5109901000	양모사	8	0	
5109909000	섬수모사	8	0	
5110000000	조수모사 또는 마모사(짐프한 마모사를 포함하며, 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	0	
5111111000	양모의 것	13	0	
5111112000	섬수모의 것	13	0	
5111191000	양모의 것	13	0	
5111192000	섬수모의 것	13	0	
511120000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의 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13	0	
511130000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의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13	0	
5111900000	기타	13	0	
5112111000	양모의 것	13	0	
5112112000	섬수모의 것	13	0	
5112191000	양모의 것	13	0	
5112192000	섬수모의 것	1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11220000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의 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13	0	
511230000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의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13	0	
5112900000	기타	13	0	
5113000000	직물(조수모 또는 마모의 것에 한한다)	13	0	
5201001000	실면	0	0	
5201009010	섬유길이가 23.2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5201009020	섬유길이가 23.2 밀리미터 이상 25.4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5201009030	섬유길이가 25.4 밀리미터 이상 28.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5201009050	섬유길이가 28.5 밀리미터 이상 34.9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5201009060	섬유길이가 34.9 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5202100000	사웨이스트(실의 웨이스트를 포함한다)	0	0	
5202910000	가아넷스톡	0	0	
5202990000	기타	0	0	
5203000000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한다)	0	0	
5204110000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8	0	
5204190000	기타	8	0	
5204200000	소매용의 것	8	0	
520511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3	
5205119000	기타	8	0	
5205121010	232.56 데시텍스 이상 370.37 데시텍스 이하 (미터식 번수 27 수 이상 43 수 이하)의 것(오픈 엔드사를 제외한다)	4	0	
5205121090	기타	8	0	
5205129000	기타	8	0	
520513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139000	기타	8	0	
520514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149000	기타	8	0	
520515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159000	기타	8	0	
520521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5	
5205219000	기타	8	5	
520522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5	
5205229000	기타	8	5	
520523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5	
5205239000	기타	8	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20524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5	
5205249000	기타	8	5	
520526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5	
5205269000	기타	8	5	
520527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5	
5205279000	기타	8	5	
520528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5	
5205289000	기타	8	5	
520531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319000	기타	8	0	
5205321010	232.56 데시텍스 이상 370.37 데시텍스 이하 (미터식 번수 27 수 이상 43 수 이하)의 것(오픈 엔드사를 제외한다)	4	0	
5205321090	기타	8	0	
5205329000	기타	8	0	
520533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339000	기타	8	0	
520534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5	
5205349000	기타	8	5	
520535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5	
5205359000	기타	8	5	
520541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5	
5205419000	기타	8	5	
520542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5	
5205429000	기타	8	5	
520543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5	
5205439000	기타	8	5	
520544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5	
5205449000	기타	8	5	
520546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5	
5205469000	기타	8	5	
520547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5	
5205479000	기타	8	0	
520548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489000	기타	8	0	
520611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119000	기타	8	0	
520612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129000	기타	8	0	
520613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13900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20614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149000	기타	8	0	
520615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159000	기타	8	0	
520621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5	
5206219000	기타	8	5	
520622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5	
5206229000	기타	8	5	
520623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5	
5206239000	기타	8	5	
520624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5	
5206249000	기타	8	5	
520625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5	
5206259000	기타	8	5	
520631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319000	기타	8	0	
520632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329000	기타	8	0	
520633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339000	기타	8	0	
520634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349000	기타	8	0	
520635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359000	기타	8	0	
520641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5	
5206419000	기타	8	5	
520642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5	
5206429000	기타	8	5	
520643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5	
5206439000	기타	8	5	
520644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5	
5206449000	기타	8	5	
520645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5	
5206459000	기타	8	5	
520710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7109000	기타	8	0	
520790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7909000	기타	8	3	
5208110000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1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208120000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에 한한다)	10	0	
52081300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8190000	기타 직물	10	0	
5208210000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10	0	
5208220000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에 한한다)	10	0	
52082300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8290000	기타 직물	10	0	
5208310000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10	0	
5208320000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에 한한다)	10	0	
52083300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8390000	기타 직물	10	0	
5208410000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10	0	
5208420000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에 한한다)	10	3	
52084300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8490000	기타 직물	10	0	
5208510000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10	0	
5208520000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에 한한다)	10	0	
52085910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8599000	기타	10	0	
5209110000	평직물	10	0	
52091200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9190000	기타 직물	10	3	
5209210000	평직물	10	0	
52092200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9290000	기타 직물	10	0	
5209310000	평직물	1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2093200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9390000	기타 직물	10	0	
5209410000	평직물	10	0	
5209420000	데님	10	0	
5209430000	3 올 또는 4 올의 기타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9490000	기타 직물	10	0	
5209510000	평직물	10	0	
52095200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9590000	기타 직물	10	0	
5210110000	평직물	10	0	
52101910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0199000	기타	10	0	
5210210000	평직물	10	0	
52102910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0299000	기타	10	0	
5210310000	평직물	10	0	
52103200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0390000	기타 직물	10	0	
5210410000	평직물	10	0	
52104910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0499000	기타	10	0	
5210510000	평직물	10	0	
5210590000	기타 직물	10	0	
5211110000	평직물	10	0	
52111200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1190000	기타 직물	10	0	
5211200000	표백한 것	10	0	
5211310000	평직물	10	0	
52113200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1390000	기타 직물	10	0	
5211410000	평직물	10	0	
5211420000	데님	1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211430000	3 올 또는 4 올의 기타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1490000	기타 직물	10	0	
5211510000	평직물	10	0	
52115200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1590000	기타 직물	10	0	
52121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10	0	
5212120000	표백한 것	10	0	
5212130000	염색한 것	10	0	
5212140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10	0	
5212150000	날염한 것	10	0	
52122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10	0	
5212220000	표백한 것	10	0	
5212230000	염색한 것	10	0	
5212240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10	0	
5212250000	날염한 것	10	0	
5301100000	생아마 또는 침지아마	2	3	
5301210000	쇄경 또는 타마한 것	2	3	
5301290000	기타	2	3	
5301301000	아마의 토우	2	3	
5301302000	아마의 웨이스트	2	3	
5302100000	생대마 또는 침지대마	2	3	
5302901000	쇄경, 타마, 핵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대마(방적한 것은 제외한다)	2	3	
5302902010	대마의 토우	2	3	
5302902020	대마의 웨이스트	2	3	
5303101000	황마	2	0	
5303102000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	2	0	
5303901010	황마	2	0	
5303901090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	2	0	
5303909010	황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	2	0	
5303909090	기타의 방직용 인피섬유의 토우 및 웨이스트	2	0	
5305001010	생 것	2	0	
5305001090	기타	2	0	
5305002010	생 것	2	0	
5305002090	기타	2	0	
5305003010	생 것	2	0	
5305003090	기타	2	0	
5305009010	생 것	2	0	
5305009090	기타	2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306101000	순아마사	8	0	
5306102000	혼방아마사	8	0	
5306201000	순아마사	8	0	
5306202000	혼방아마사	8	0	
5307101000	황마사	8	0	
5307109000	기타	8	0	
5307201000	황마사	8	0	
5307209000	기타	8	0	
5308100000	코이어사	8	0	
5308200000	대마사	8	0	
5308901000	라미사	8	0	
5308909000	기타	8	0	
53091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2	0	
5309190000	기타	2	0	
53092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2	0	
5309290000	기타	2	0	
5310101000	황마직물	8	0	
5310109000	기타	8	0	
5310901000	황마직물	8	0	
5310909000	기타	8	0	
5311001000	라미의 것	8	0	
5311002000	대마의 것	8	0	
5311003000	지사의 것	8	0	
5311009000	기타	8	0	
540110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1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110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1109000	기타	8	0	
540120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8	0	
54012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401209000	기타	8	0	
5402110000	아라미드의 것	8	0	
5402191011	타이어 코드사	8	0	
5402191012	어망사	8	0	
5402191019	기타	8	0	
5402191021	타이어 코드사	8	0	
5402191022	어망사	8	0	
5402191029	기타 사	8	0	
5402191090	기타	8	0	
5402199000	기타	8	0	
540220000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에 한한다)	8	0	
5402311010	나일론 6의 것	8	0	
5402311020	나일론 66의 것	8	0	
5402311090	기타	8	0	
5402319000	기타	8	0	
5402321010	나일론 6의 것	8	0	
5402321020	나일론 66의 것	8	0	
5402321090	기타	8	0	
5402329000	기타	8	0	
540233100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	0	
5402339000	기타	8	0	
540234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0	
5402390000	기타	8	0	
5402440000	탄성사	8	0	
5402451010	나일론 6의 것	8	0	
5402451020	나일론 66의 것	8	0	
5402451090	기타	8	0	
5402459000	기타	8	0	
540246100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	0	
5402469000	기타	8	0	
540247100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	0	
5402479000	기타	8	0	
5402480000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에 한한다)	8	0	
54024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2499000	기타	8	0	
5402510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252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25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2599000	기타	8	0	
5402610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3	
540262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26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2692000	폴리비닐알코올의 것	8	0	
5402699000	기타	8	0	
5403100000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의 것에 한한다)	2	0	
5403311000	텍스처드사	2	0	
5403319000	기타	2	0	
5403321000	텍스처드사	2	0	
5403329000	기타	2	0	
5403331000	텍스처드사	8	0	
5403339000	기타	8	0	
5403391000	텍스처드사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403399000	기타	8	0	
5403411000	텍스처드사	2	0	
5403419000	기타	2	0	
5403421000	텍스처드사	8	0	
5403429000	기타	8	0	
5403491000	텍스처드사	8	0	
5403499000	기타	8	0	
5404110000	탄성사	8	0	
5404120000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에 한한다)	8	0	
540419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4192000	폴리우레탄의 것	8	0	
5404193000	폴리비닐알코올의 것	8	0	
5404199000	기타	8	0	
5404901000	스트립상의 것	8	0	
5404909000	기타	8	0	
5405001000	모노필라멘트	8	0	
5405009000	기타	8	0	
5406001000	합성필라멘트사	8	0	
5406002000	재생 또는 반합성의 필라멘트사	8	0	
540710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200000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8	0	
5407300000	제 11 부의 주 제 9 호의 직물	8	0	
54074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407420000	염색한 것	8	0	
5407430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8	0	
5407440000	날염한 것	8	0	
54075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407520000	염색한 것	8	0	
5407530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8	0	
5407540000	날염한 것	8	0	
540761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407612000	염색한 것	8	0	
5407613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8	0	
5407614000	날염한 것	8	0	
540769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407692000	염색한 것	8	0	
5407693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8	0	
5407694000	날염한 것	8	0	
540771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719000	기타	8	0	
540772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729000	기타	8	0	
540773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739000	기타	8	0	
540774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749000	기타	8	0	
540781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81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81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819000	기타	8	0	
540782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82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82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829000	기타	8	0	
540783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83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83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839000	기타	8	0	
540784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84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84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849000	기타	8	0	
540791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91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91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919000	기타	8	0	
540792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92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92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929000	기타	8	0	
540793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93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93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939000	기타	8	0	
540794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94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94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949000	기타	8	0	
5408100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8	0	
54082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408220000	염색한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408230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8	0	
5408240000	날염한 것	8	0	
54083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408320000	염색한 것	8	0	
5408330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8	0	
5408340000	날염한 것	8	0	
5501100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50120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501301000	아크릴의 것	8	0	
5501302000	모다크릴의 것	8	0	
550140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0	
5501900000	기타	8	0	
550200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7.5	0	
5502002010	44,000 데시텍스 미만의 것	7.5	0	
5502002020	44,000 데시텍스 이상의 것	7.5	0	
5502009000	기타	7.5	0	
5503111000	이형단면의 것	8	0	
5503119000	기타	8	0	
5503191000	이형단면의 것	8	0	
5503199000	기타	8	0	
5503201000	이형단면의 것	8	0	
550320901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	0	
5503209090	기타	8	0	
5503301010	이형단면의 것	8	0	
5503301020	콘쥬게이트 단면의 것	8	0	
5503301090	기타	8	0	
5503302010	이형단면의 것	8	0	
5503302020	콘쥬게이트 단면의 것	8	0	
5503302090	기타	8	0	
550340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0	
5503900000	기타	8	0	
5504101000	이형단면의 것	2	0	
5504102000	폴리노직 단면의 것	2	0	
5504109000	기타	2	0	
5504901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04902000	리오셀의 것	4	0	
5504909000	기타	8	0	
5505100000	합성섬유의 것	2	0	
5505200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의 것	2	0	
5506101000	이형단면의 것	8	0	
5506109000	기타	8	0	
5506201000	이형단면의 것	8	0	
5506209000	기타	8	0	
5506301010	이형단면의 것	8	0	
5506301020	콘쥬게이트 단면의 것	8	0	
5506301090	기타	8	0	
5506302010	이형단면의 것	8	0	
5506302020	콘쥬게이트 단면의 것	8	0	
5506302090	기타	8	0	
5506900000	기타	8	0	
5507001010	이형단면의 것	8	0	
5507001020	폴리노직 단면의 것	8	0	
5507001090	기타	8	0	
55070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07009000	기타	8	0	
550810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508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508103000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것	8	0	
5508109000	기타	8	0	
550820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8	0	
55082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08209000	기타	8	0	
5509111000	강력사	8	5	
5509119000	기타	8	5	
5509121000	강력사	8	5	
5509129000	기타	8	5	
5509211000	강력사	8	5	
5509219000	기타	8	5	
5509221000	강력사	8	5	
5509229000	기타	8	5	
5509311000	아크릴의 것	8	5	
5509312000	모다크릴의 것	8	5	
5509321000	아크릴의 것	8	5	
5509322000	모다크릴의 것	8	5	
5509410000	단사	8	5	
5509420000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8	5	
55095100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8	5	
55095200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8	5	
55095300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8	5	
5509590000	기타	8	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509611000	아크릴의 것	8	5	
5509612000	모다크릴의 것	8	5	
5509621000	아크릴의 것	8	5	
5509622000	모다크릴의 것	8	5	
5509691010	아크릴의 것	8	5	
5509691020	모다크릴의 것	8	5	
5509692010	아크릴의 것	8	5	
5509692020	모다크릴의 것	8	5	
550991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5	
5509919000	기타	8	5	
550992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5	
5509929000	기타	8	5	
5509990000	기타	8	5	
551011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8	5	
55101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5	
5510119000	기타	8	5	
551012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8	5	
55101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5	
5510129000	기타	8	5	
551020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8	5	
55102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5	
5510209000	기타	8	5	
551030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8	5	
55103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5	
5510309000	기타	8	5	
551090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8	5	
55109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5	
5510909000	기타	8	5	
551110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511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511103000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것	8	0	
5511109000	기타	8	0	
551120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5112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511203000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것	8	0	
5511209000	기타	8	0	
551130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8	0	
55113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11309000	기타	8	0	
55121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5512191000	염색한 것	10	0	
5512192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10	0	
5512193000	날염한 것	10	0	
5512211000	아크릴의 것	10	0	
5512212000	모다크릴의 것	10	0	
5512290000	기타	10	0	
551291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2919000	기타	10	0	
551299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2999000	기타	10	0	
55131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10	0	
55131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 올 또는 4 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10	0	
55131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10	0	
551319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31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3192020	모다크릴의 것	10	0	
5513199000	기타	10	0	
55132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10	0	
5513231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 올 또는 4 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10	0	
5513239000	기타	10	0	
5513291000	나일론 또는 기타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32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3292020	모다크릴의 것	10	0	
5513299000	기타	10	0	
55133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10	0	
551339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33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3392020	모다크릴의 것	10	0	
5513399000	기타	10	0	
55134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10	0	
551349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34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3492020	모다크릴의 것	10	0	
5513499000	기타	10	0	
55141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10	0	
55141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 올 또는 4 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10	0	
551419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41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4192020	모다크릴의 것	1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514193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직물	10	0	
5514199000	기타	10	0	
55142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10	0	
55142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 올 또는 4 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10	0	
55142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10	0	
551429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42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4292020	모다크릴의 것	10	0	
5514299000	기타	10	0	
5514300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10	0	
55144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10	0	
55144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 올 또는 4 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10	0	
55144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10	0	
551449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44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4492020	모다크릴의 것	10	0	
5514499000	기타	10	0	
551511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5515119000	기타	10	0	
551512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5515129000	기타	10	0	
551513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5515139000	기타	10	0	
551519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5515199000	기타	10	0	
551521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5515219000	기타	10	0	
551522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5515229000	기타	10	0	
551529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5515299000	기타	10	0	
551591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5515919000	기타	10	0	
551599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5515999000	기타	10	0	
551611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1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119000	기타	10	0	
551612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5161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129000	기타	10	0	
551613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1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139000	기타	10	0	
551614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1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149000	기타	10	0	
551621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2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219000	기타	10	0	
551622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2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229000	기타	10	0	
551623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2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239000	기타	10	0	
551624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2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249000	기타	10	0	
551631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3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319000	기타	10	0	
551632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3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329000	기타	10	0	
551633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3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339000	기타	10	0	
551634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3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349000	기타	10	0	
551641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4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419000	기타	10	0	
551642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4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429000	기타	10	0	
551643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4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439000	기타	1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603940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8	0	
5604100000	고무사와 고무코드(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8	0	
5604901000	모조캣거트(방직용 섬유사로 만든 것에 한한다)	8	0	
5604902000	강력사(폴리에스테르,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또는 비스코스레이온의 것으로서 침투 또는 도포한 것)	8	0	
5604909000	기타	8	0	
5605000000	금속드리사(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방직용 섬유사 또는 제 5404 호 또는 제 5405 호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 스트립 또는 분상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 또는 금속으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8	0	
5606001000	짐프사	8	0	
5606002000	셔닐사	8	0	
5606003000	루프웨일사	8	0	
5606009000	기타	8	0	
5607210000	포장용 끈	10	0	
5607290000	기타	10	0	
5607410000	포장용 끈	10	0	
5607490000	기타	10	0	
5607500000	기타 합성섬유의 것	10	0	
5607901000	제 5303 호의 황마 또는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의 것	10	0	
5607909000	기타	10	0	
5608111000	합성섬유제의 것	10	0	
5608119000	기타	10	0	
5608191000	합성섬유제의 것	10	0	
5608199000	기타	10	0	
5608901000	면제의 것	10	0	
5608909000	기타	10	0	
5609001000	면제의 것	8	0	
5609002000	식물성섬유제의 것(면제의 것은 제외한다)	8	0	
5609003000	인조섬유제의 것	8	0	
5609009000	기타	8	0	
570110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	0	
5701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0	
5702100000	"켈럼", "슈맥", "카라마니" 및 이와 유사한 수직으로 된 러그	10	0	
5702200000	코코넛섬유(코이어)제의 바닥깔개	10	0	
57023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	0	
5702320000	인조섬유제의 것	1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51644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4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449000	기타	10	0	
551691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9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919000	기타	10	0	
551692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9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929000	기타	10	0	
551693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9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939000	기타	10	0	
551694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9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949000	기타	10	0	
5601100000	워딩제의 위생타올 및 탐폰, 유아용 냅킨과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8	0	
5601210000	면제의 것	8	0	
5601220000	인조섬유제의 것	8	0	
5601290000	기타	8	0	
5601301000	섬유의 플록	8	0	
5601309000	기타	8	0	
5602101000	니들룸 펠트	8	0	
5602102000	스티치 본드 섬유직물	8	0	
5602211000	피아노 펠트	8	0	
5602219000	기타	8	0	
5602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8	0	
5602900000	기타	8	0	
5603111000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것	8	0	
5603119000	기타	8	0	
5603121000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것	8	0	
5603129000	기타	8	0	
5603131000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것	8	0	
5603139000	기타	8	0	
5603141000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것	8	0	
5603149000	기타	8	0	
5603910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8	0	
5603920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초과 70 그램 이하인 것	8	0	
5603930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 초과 150 그램 이하인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804103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5804109000	기타	13	0	
5804210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5804291000	견제의 것	13	0	
5804292000	면제의 것	13	0	
5804299000	기타	13	0	
5804300000	수제의 레이스	13	0	
580500101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8	0	
5805001090	기타	8	0	
5805002000	자수의 태피스트리	8	0	
5806101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8	0	
5806102000	면제의 것	8	0	
5806103000	인조섬유제의 것	8	0	
5806109000	기타	8	0	
5806200000	기타 직물(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8	0	
5806310000	면제의 것	8	0	
5806320000	인조섬유제의 것	8	0	
5806391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8	0	
5806392000	식물성섬유제의 것(면제의 것은 제외한다)	8	0	
5806399000	기타	8	0	
5806400000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의 세폭직물(볼덕)	8	0	
5807101000	레이블	8	0	
5807109000	기타	8	0	
5807901000	레이블	8	0	
5807909000	기타	8	0	
5808100000	브레이드(원단상의 것에 한한다)	8	0	
5808901000	장식용 트리밍	8	0	
5808909000	기타	8	0	
5809000000	금속사의 직물과 제 5605 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의 직물(의류 · 실내용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	0	
5810100000	자수포(기본지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	13	0	
5810910000	면제의 것	13	0	
5810920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5810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0	
5811001000	견제의 것	8	0	
5811002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8	0	
5811003000	면제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7023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0	
57024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	0	
5702420000	인조섬유제의 것	10	0	
57024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0	
5702500000	기타(파일직물의 것과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10	0	
57029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	0	
5702920000	인조섬유제의 것	10	0	
5702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0	
570310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	0	
5703200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703300000	기타 인조 섬유제의 것	10	0	
5703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0	
5704100000	타일(표면적이 최고 0.3 제곱미터인 것에 한한다)	10	0	
5704900000	기타	10	0	
5705000000	기타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0	0	
5801101000	파일직물	13	0	
5801102000	셔닐직물	13	0	
5801210000	절단되지 아니한 위(緯)파일 직물	13	0	
5801220000	절단된 코르덴	13	0	
5801230000	기타 위(緯)파일 직물	13	0	
5801240000	절단되지 아니한 경파일 직물	13	0	
5801250000	절단된 경파일 직물	13	0	
5801260000	셔닐직물	13	0	
5801310000	절단되지 아니한 위(緯)파일 직물	13	0	
5801320000	절단된 코르덴	13	0	
5801330000	기타 위(緯)파일 직물	13	0	
5801340000	절단되지 아니한 경파일 직물	13	0	
5801350000	절단된 경파일 직물	13	0	
5801360000	셔닐직물	13	0	
5801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0	
58021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8	0	
5802190000	기타	8	0	
58022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테리타올지 및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	8	0	
5802300000	터후트 직물	8	0	
5803000000	거즈(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세폭직물은 제외한다)	8	0	
5804101000	견제의 것	13	0	
5804102000	면제의 것	1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911400000	착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종류의 여과포(인모제의 것을 포함한다)	8	0	
5911900000	기타	8	0	
6001101000	면제의 것	10	0	
6001102000	인조섬유제의 것	10	0	
6001109000	기타	10	0	
6001210000	면제의 것	10	0	
6001220000	인조섬유제의 것	10	0	
6001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0	
6001910000	면제의 것	10	0	
6001920000	인조섬유제의 것	10	0	
6001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0	
6002400000	탄성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퍼센트 이상이며, 고무사는 함유하지 아니한 것	10	0	
6002900000	기타	10	0	
600310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	0	
6003200000	면제의 것	10	0	
6003300000	합성 섬유제의 것	10	0	
6003400000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10	0	
6003900000	기타	10	0	
6004100000	탄성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퍼센트 이상이며, 고무사는 함유하지 아니한 것	10	0	
6004900000	기타	10	0	
60052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6005220000	염색한 것	10	0	
6005230000	서로 다른 색사의 것	10	0	
6005240000	날염한 것	10	0	
60053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6005320000	염색한 것	10	0	
6005330000	서로 다른 색사의 것	10	0	
6005340000	날염한 것	10	0	
60054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6005420000	염색한 것	10	0	
6005430000	서로 다른 색사의 것	10	0	
6005440000	날염한 것	10	0	
6005900000	기타	10	0	
600610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	0	
60062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6006220000	염색한 것	10	0	
6006230000	서로 다른 색사의 것	10	0	
6006240000	날염한 것	1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811004000	인조섬유제의 것	8	0	
5811009000	기타	8	0	
5901100000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검 또는 전분질의 물품으로 도포한 것으로서, 서적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	8	0	
5901901000	트레이싱포	8	0	
5901902000	회화용 캔버스	8	0	
5901903000	버크럼 및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8	0	
5902100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제의 것	8	0	
5902200000	폴리에스테르제의 것	8	0	
5902900000	기타	8	0	
5903100000	폴리(염화비닐)의 것	10	0	
5903200000	폴리우레탄의 것	10	0	
5903900000	기타	10	0	
5904100000	리놀륨	8	0	
5904900000	기타	8	0	
5905000000	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복재	8	0	
5906100000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	8	0	
5906910000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	8	0	
5906990000	기타	8	0	
5907001000	기름으로 도포 또는 침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또는 건성유의 조제품	8	0	
5907002000	극장용 배경,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8	0	
5907009000	기타	8	0	
5908001000	심지	8	0	
5908009000	기타	8	0	
5909000000	방직용 섬유제의 호스 및 이와 유사한 관상의 물품(다른 재료로 내장, 보강했는지 또는 다른 재료의 부속품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5910000000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 벨트 또는 벨팅(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하며,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 또는 기타 재료로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5911101000	세폭직물의 것	8	0	
5911109000	기타	8	0	
5911200000	볼팅클로드(제품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5911310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미만인 것	8	0	
5911320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이상인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60063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6006320000	염색한 것	10	0	
6006330000	서로 다른 색사의 것	10	0	
6006340000	날염한 것	10	0	
60064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6006420000	염색한 것	10	0	
6006430000	서로 다른 색사의 것	10	0	
6006440000	날염한 것	10	0	
6006900000	기타	10	0	
6101200000	면제의 것	13	0	
610130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130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1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0	
610210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102200000	면제의 것	13	0	
610230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230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2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0	
6103101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103102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3109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0	
6103220000	면제의 것	13	0	
61032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3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0	
61033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103320000	면제의 것	13	0	
61033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33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3	
61034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3	
6103420000	면제의 것	13	0	
61034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34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0	
61041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4191000	면제의 것	13	0	
6104199000	기타	13	3	
6104220000	면제의 것	13	0	
61042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4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0	
61043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104320000	면제의 것	13	0	
61043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43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3	
61044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104420000	면제의 것	13	0	
61044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3	
6104440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4491000	견제의 것	13	0	
6104499000	기타	13	3	
61045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104520000	면제의 것	13	3	
61045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45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0	
61046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104620000	면제의 것	13	0	
61046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46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0	
6105100000	면제의 것	13	0	
610520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520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5901000	견제의 것	13	0	
6105902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105909000	기타	13	0	
6106100000	면제의 것	13	3	
610620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620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6901000	견제의 것	13	0	
6106902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106909000	기타	13	3	
6107110000	면제의 것	13	3	
610712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712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71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0	
6107210000	면제의 것	13	0	
610722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722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7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0	
6107910000	면제의 것	13	0	
6107991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107999000	기타	13	0	
610811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811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8191000	면제의 것	1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6112201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6112209000	기타	13	0	
611231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3	
61123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0	
611241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124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0	
6113001000	제 5903 호의 것	13	0	
6113002000	제 5906 호의 것	13	0	
6113003000	제 5907 호의 것	13	0	
6114200000	면제의 것	13	0	
611430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1430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3	
6114901000	견제의 것	13	0	
6114909000	기타	13	3	
611510000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13	0	
6115210000	합성섬유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에 한한다)	13	0	
6115220000	합성섬유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에 한한다)	13	0	
6115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0	
6115301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6115309000	기타	13	0	
611594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115950000	면제의 것	13	0	
611596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15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0	
6116100000	플라스틱 또는 고무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	8	0	
61169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8	0	
6116921000	작업용 장갑	8	0	
6116929000	기타	8	3	
6116930000	합성섬유제의 것	8	0	
6116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8	0	
6117101000	견제의 것	13	0	
6117102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117103000	면제의 것	13	0	
6117104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6117109000	기타	13	0	
6117801000	넥타이류	13	0	
6117809000	기타	13	0	
6117900000	부분품	1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6108199000	기타	13	0	
6108210000	면제의 것	13	0	
610822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822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8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3	
6108310000	면제의 것	13	0	
610832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832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83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3	
6108910000	면제의 것	13	3	
610892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892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8991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108999000	기타	13	0	
6109101000	티셔츠	13	0	
6109109000	기타	13	0	
6109901010	티셔츠	13	0	
6109901090	기타	13	0	
6109902010	티셔츠	13	0	
6109902090	기타	13	3	
6109903010	티셔츠	13	0	
6109903090	기타	13	0	
6109909010	티셔츠	13	0	
6109909090	기타	13	0	
6110110000	양모의 것	13	0	
61101200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13	0	
6110190000	기타	13	0	
6110200000	면제의 것	13	3	
611030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1030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10901000	견제의 것	13	0	
6110909000	기타	13	0	
6111201000	의류	13	0	
6111202000	부속품	13	0	
6111301000	의류	13	3	
6111302000	부속품	13	0	
6111901000	의류	13	0	
6111902000	부속품	13	0	
6112110000	면제의 것	13	0	
611212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121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62011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1120000	면제의 것	13	0	
620113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113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11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0	
62019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1920000	면제의 것	13	0	
620193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193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1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0	
62021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2120000	면제의 것	13	0	
620213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213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21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3	
62029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2920000	면제의 것	13	0	
620293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293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2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0	
62031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312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31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203220000	면제의 것	13	0	
62032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3291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3299000	기타	13	0	
62033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3320000	면제의 것	13	0	
62033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33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0	
62034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3421000	데님의 것(청바지를 포함한다)	13	0	
6203429000	기타	13	0	
62034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34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0	
62041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4120000	면제의 것	13	0	
62041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4191000	견제의 것	13	0	
6204199000	기타	13	3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62042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4220000	면제의 것	13	0	
62042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4291000	견제의 것	13	0	
6204299000	기타	13	3	
62043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4320000	면제의 것	13	0	
62043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4391000	견제의 것	13	0	
6204399000	기타	13	3	
62044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3	
6204420000	면제의 것	13	3	
62044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4440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3	
6204491000	견제의 것	13	0	
6204499000	기타	13	3	
62045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4520000	면제의 것	13	0	
62045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4591000	견제의 것	13	0	
6204599000	기타	13	0	
62046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4621000	데님의 것(청바지를 포함한다)	13	0	
6204629000	기타	13	0	
62046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4691000	견제의 것	13	0	
6204699000	기타	13	0	
6205200000	면제의 것	13	0	
620530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3	
620530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5901000	견제의 것	13	0	
6205902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3	
6205909000	기타	13	0	
620610000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13	0	
620620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6300000	면제의 것	13	0	
620640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640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3	
6206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0	
6207110000	면제의 것	13	0	
6207191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6207199000	기타	13	0	
6207210000	면제의 것	13	0	
620722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722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7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0	
6207910000	면제의 것	13	0	
6207991000	견제의 것	13	0	
6207992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3	
620799301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799302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7999000	기타	13	0	
620811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811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8191000	견제의 것	13	0	
6208192000	면제의 것	13	0	
6208199000	기타	13	0	
6208210000	면제의 것	13	0	
620822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822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8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0	
6208910000	면제의 것	13	0	
620892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892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8991000	견제의 것	13	0	
6208992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3	
6208999000	기타	13	3	
6209201000	의류	13	0	
6209202000	부속품	13	0	
6209301000	의류	13	0	
6209302000	부속품	13	0	
620990101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9901090	기타	13	3	
6209902000	부속품	13	0	
6210101000	제 5602 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102000	제 5603 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201000	제 5903 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202000	제 5906 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203000	제 5907 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301000	제 5903 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302000	제 5906 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303000	제 5907 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401000	제 5903 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402000	제 5906 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403000	제 5907 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501000	제 5903 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502000	제 5906 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503000	제 5907 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1111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6211119000	기타	13	3	
6211121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6211129000	기타	13	0	
6211201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6211209000	기타	13	0	
6211321000	유도, 태권도 및 기타 동양 무술복	13	0	
6211329000	기타	13	0	
621133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3	
621133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11391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11399000	기타	13	3	
62114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11421000	유도, 태권도 및 기타 동양 무술복	13	0	
6211429000	기타	13	0	
621143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1143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114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0	
6212101000	면제의 것	13	0	
6212102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3	
6212109000	기타	13	0	
6212201000	면제의 것	13	0	
6212202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3	
6212209000	기타	13	0	
6212300000	콜세렛트	13	0	
6212900000	기타	13	3	
6213200000	면제의 것	8	0	
6213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8	0	
621410000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8	0	
6214200000	양모제 또는 섬수모제의 것	8	0	
6214300000	합성섬유제의 것	8	0	
6214400000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8	0	
6214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8	0	
621510000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8	0	
6215200000	인조섬유제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6304920000	면제의 것(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의 것은 제외한다)	13	0	
6304930000	합성섬유제의 것(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의 것은 제외한다)	13	0	
6304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의 것은 제외한다)	13	0	
6305100000	황마 또는 제 5303 호의 기타 방직용 인피(靭皮) 섬유제의 것	8	0	
6305200000	면제의 것	8	3	
6305320000	중간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에 한한다)	8	0	
6305330000	기타(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것에 한한다)	8	0	
6305390000	기타	8	0	
6305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8	0	
630612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3061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0	
630622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306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3	
6306300000	돛	13	0	
6306401000	면제의 것	13	0	
6306409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0	
6306910000	면제의 것	13	0	
630699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306999000	기타	13	0	
6307100000	마루닦이포, 접시닦이포, 더스터 및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10	0	
6307200000	구명재킷 및 구명벨트	10	0	
6307901000	신발류 끈	10	0	
6307902000	보자기	10	0	
6307903000	드레스 패턴	10	0	
6307909000	기타	10	0	
6308000000	러그·태피스트리·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 또는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에 한한다)	13	0	
6309000000	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용하던 제품	8	0	
6310100000	선별한 것	8	0	
6310900000	기타	8	0	
6401100000	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신발	8	0	
6401921000	스키부츠	8	0	
6401929010	고무제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6215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8	0	
6216001000	플라스틱 또는 고무로 침투, 도포 또는 피복한 것	8	0	
6216009000	기타	8	0	
6217100000	부속품	13	0	
6217900000	부분품	13	0	
6301100000	전기모포	10	0	
630120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	10	3	
6301300000	면제의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	10	0	
6301400000	합성섬유제의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	10	0	
6301900000	기타 모포와 여행용 러그	10	0	
6302101000	면제의 것	13	0	
6302109000	기타	13	0	
6302210000	면제의 것	13	0	
6302220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6302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0	
6302310000	면제의 것	13	0	
6302320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63023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0	
6302400000	테이블린넨(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의 것에 한한다)	13	0	
6302510000	면제의 것	13	0	
6302530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63025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0	
6302600000	면제의 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테리타올지 또는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의 것에 한한다)	13	0	
6302910000	면제의 것	13	0	
6302930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6302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0	
630312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303191000	면제의 것	13	0	
6303199000	기타	13	0	
6303910000	면제의 것	13	0	
630392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303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3	0	
6304110000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의 것	13	0	
6304190000	기타	13	0	
6304910000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의 것	1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6401929090	기타	8	0	
6401991010	고무제의 것	8	0	
6401991090	기타	8	0	
6401999000	기타	8	0	
6402120000	스키부츠, 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13	0	
6402190000	기타	13	0	
6402200000	신발(갑피끈을 플럭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에 한한다)	13	0	
6402911000	방한화	13	0	
6402912000	정구화, 농구화, 운동화, 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13	0	
6402919000	기타	13	0	
6402991000	샌달 또는 이와 유사한 신발로서 주조에 의하여 단일체로 제조된 것	13	0	
6402992000	정구화, 농구화, 운동화, 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13	0	
6402999000	기타	13	0	
6403120000	스키부츠, 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13	0	
6403190000	기타	13	0	
640320000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제 끈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13	0	
6403400000	기타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것에 한한다)	13	0	
6403511000	드레스화	13	0	
6403519000	기타	13	0	
6403591000	드레스화	13	0	
6403599000	기타	13	0	
6403911000	드레스화	13	0	
6403912000	등산화	13	0	
6403913000	편상화	13	0	
6403914000	정구화, 농구화, 운동화, 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13	0	
6403919000	기타	13	3	
6403991000	드레스화	13	0	
6403992000	등산화	13	0	
6403993000	편상화	13	0	
6403994000	정구화, 농구화, 운동화, 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13	0	
6403999000	기타	1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6404110000	스포츠용 신발류, 정구화·농구화·운동화·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13	0	
6404191000	실내화	13	0	
6404199000	기타	13	0	
6404201000	실내화	13	0	
6404209000	기타	13	0	
6405100000	갑피가 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인 것	13	0	
6405200000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것	13	0	
6405900000	기타	13	0	
6406101000	갑피	8	0	
6406102000	부분품	8	0	
6406201000	바깥바닥	8	0	
6406202000	뒷굽	8	0	
6406910000	목재제의 것	8	0	
6406991000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	8	0	
6406992000	힐 쿠션	8	0	
6406993000	각반	8	0	
6406994000	레깅	8	0	
6406999000	기타	8	0	
6501000000	펠트제의 모체(성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펠트제의 플래토우 및 망송(슬릿망송을 포함한다)	8	0	
6502000000	모체(각종 재료제의 스트립을 엮은 것 또는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성형하지 아니한 것,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 안을 대지 아니한 것 그리고 장식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	0	
6504000000	모자(각종 재료제의 스트립을 엮은 것 또는 결합하여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6505100000	헤어네트	8	0	
6505901010	합성섬유제의 것	8	0	
6505901090	기타 섬유제의 것	8	0	
6505902010	운동모	8	0	
6505902020	베레모	8	0	
6505902090	기타	8	0	
6505909000	기타	8	0	
6506100000	안전모자	8	0	
6506910000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	8	0	
6506991000	가죽제의 것	8	0	
6506992000	금속제의 것	8	0	
650699900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6507000000	모자용의 밴드·내장재·커버·해트파운데이션·해트프레임·챙 및 턱끈	8	0	
6601100000	정원용 또는 이와 유사한 산류	13	0	
6601910000	대가 절첩식의 것	13	0	
6601991000	지팡이겸용 우산	13	0	
6601992000	양산	13	0	
6601999000	기타	13	0	
6602001000	지팡이	8	0	
6602002000	시트스틱	8	0	
6602003000	채찍, 승마용 채찍	8	0	
6602009000	기타	8	0	
6603200000	산류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13	0	
6603900000	기타	13	0	
6701000000	우모 또는 솜털이 붙은 새의 피와 기타 부분, 우모, 우모의 부분, 솜털 및 이들의 제품(제 0505 호의 물품과 가공한 우축 및 우경은 제외한다)	8	0	
6702100000	플라스틱제의 것	8	0	
6702901000	직물제의 것	8	0	
6702902000	지제의 것	8	0	
6702909000	기타	8	0	
6703001010	세척, 정돈한 것	8	0	
6703001090	기타	8	0	
6703009000	기타	8	0	
6704110000	전체가발	8	0	
6704191000	부분가발	8	0	
6704192000	가수염	8	0	
6704193000	가눈썹	8	0	
6704194000	가속눈썹	8	0	
6704199000	기타	8	0	
6704201000	전체가발	8	0	
6704202000	부분가발	8	0	
6704203000	가수염	8	0	
6704204000	가눈썹	8	0	
6704205000	가속눈썹	8	0	
6704209000	기타	8	0	
6704900000	기타 재료제의 것	8	0	
6801000000	포석, 연석 및 판석(천연석재의 것에 한하며, 슬레이트의 것은 제외한다)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6802100000	타일·큐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최대 표면적이 일변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입·세편 및 분	8	0	
6802211000	대리석	8	0	
6802212000	트래버틴	8	0	
6802213000	앨러바스터	8	0	
6802230000	화강암	8	7	
6802291000	기타 석회질 암석	8	0	
6802299000	기타	8	7	
6802911000	대리석	8	0	
6802912000	트래버틴	8	0	
6802913000	앨러바스터	8	0	
6802920000	기타 석회질 암석	8	0	
6802930000	화강암	8	7	
6802990000	기타 석	8	7	
6803001000	벼루	8	7	
6803009000	기타	8	7	
6804100000	밀스톤과 그라인드스톤(밀링용, 그라인딩용 또는 펄핑용의 것에 한한다)	8	0	
6804210000	합성 또는 천연다이아몬드제의 것(응결된 것에 한한다)	8	5	
6804220000	기타 연마제의 것(응결된 것에 한한다) 또는 도자제의 것	8	3	
6804230000	천연석제의 것	8	0	
6804300000	수지석(手砥石)	8	0	
6805100000	방직용 섬유의 직물만을 기제로 한 것	8	0	
6805200000	지 또는 판지만을 기제로 한 것	8	0	
6805300000	기타 재료를 기제로 한 것	8	0	
6806101000	슬랙울	8	0	
6806102000	록울	8	0	
6806103000	세라믹 파이버	8	0	
6806109000	기타	8	0	
6806201000	박리한 버미큐라이트	8	0	
6806202000	팽창점토	8	0	
6806204000	팽창퍼라이트	8	0	
6806209000	기타	8	0	
6806901000	내화피복재	8	0	
6806909000	기타	8	0	
6807100000	롤상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6812930000	압축가공한 쉬트상 또는 롤상의 석면섬유 조인팅	8	0	
6812990000	기타	8	0	
6813201010	자동차용	8	0	
6813201090	기타	8	0	
6813202010	자동차용	8	0	
6813202090	기타	8	0	
6813209010	자동차용	8	0	
6813209090	기타	8	0	
6813810000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8	3	
6813891000	클러치 페이싱	8	0	
6813899000	기타	8	0	
6814100000	판, 쉬트 및 스트립(융결 또는 재생한 운모의 것에 한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6814900000	기타	8	0	
6815101000	비전기용 흑연제품	8	0	
6815102000	탄소섬유	8	0	
6815109000	기타	8	0	
6815200000	이탄제품	8	0	
6815910000	마그네사이트, 백운석 또는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8	0	
6815990000	기타	8	7	
6901001000	벽돌	8	0	
6901002000	블록	8	3	
6901003000	타일	8	0	
6901009010	슬래브와 패널	8	0	
6901009090	기타	8	0	
6902100000	마그네슘, 칼슘 또는 크로뮴원소(산화마그네슘, 산화칼슘 또는 산화크로뮴으로 표시하기도 한다)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8	0	
6902200000	알루미나, 실리카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8	0	
6902901000	탄화규소 또는 지르콘을 기제로 한 것	8	0	
6902909000	기타	8	3	
6903101000	레토트	8	0	
6903102010	반도체 웨이퍼 제조에 사용되는 노용의 것	3	0	
6903102090	기타	8	0	
6903103000	반응그릇	8	0	
6903104000	머플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6807900000	기타	8	0	
6808000000	패널, 보드, 타일, 블록 및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 짚 또는 목재의 대패밥·칩·파티클·톱밥 또는 기타 웨이스트를 시멘트·플라스터 또는 기타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에 한한다)	8	0	
6809110000	지 또는 판지만으로 입혔거나 보강한 것	8	3	
6809190000	기타	8	3	
6809900000	기타 제품	8	3	
6810111000	블록	8	0	
6810112000	벽돌	8	3	
6810191000	타일	8	0	
6810192000	판석	8	0	
6810193000	기와(지붕타일)	8	0	
6810199000	기타	8	0	
6810910000	조립식 건축자재(건축 또는 토목 공사용에 한한다)	8	0	
6810991000	빔 및 거더	8	0	
6810992000	파일	8	0	
6810993000	전주	8	0	
6810994000	철도침목	8	0	
6810995000	관	8	0	
6810999000	기타	8	0	
6811401010	지붕, 천장, 벽 또는 바닥재용	8	0	
6811401090	기타	8	0	
6811402010	지붕, 천장, 벽 또는 바닥재용	8	0	
6811402090	기타	8	0	
6811403000	관 및 관의 연결구류	8	0	
6811409010	지붕, 천장, 벽 또는 바닥재용	8	0	
6811409090	기타	8	0	
6811810000	파형의 쉬트	8	0	
6811820000	기타 쉬트, 패널, 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8	0	
6811830000	관 및 관의 연결구류	8	0	
6811890000	기타 제품	8	0	
6812801000	의류, 의류부속품, 신발 및 모자류	8	0	
6812802000	지, 표지용의 판지 및 펠트	8	0	
6812803000	압축가공한 쉬트상 또는 롤상의 석면섬유 조인팅	8	0	
6812809000	기타	8	0	
6812910000	의류, 의류부속품, 신발 및 모자류	8	0	
6812920000	지, 표지용의 판지 및 펠트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6909120000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8	0	
6909190000	기타	8	0	
6909900000	기타	8	3	
6910101000	세면대	8	3	
6910102000	목욕통	8	3	
6910103000	수세식변기통	8	3	
6910104000	소변기	8	3	
6910109000	기타	8	3	
6910900000	기타	8	3	
6911101000	커피 세트 또는 티세트	8	3	
6911102000	공기, 대접 및 접시	8	3	
6911109000	기타	8	3	
6911901000	가정용품	8	3	
6911902000	화장용품	8	3	
6911909000	기타	8	3	
6912001010	커피세트 또는 티세트	8	3	
6912001020	공기, 대접 및 접시	8	3	
6912001090	기타	8	3	
6912002000	가정용품	8	3	
6912003000	화장용품	8	3	
6912009000	기타	8	3	
6913101000	상, 소상 및 흉상	8	3	
6913109020	장식용 식탁용품	8	3	
6913109090	기타	8	3	
6913901000	상, 소상 및 흉상	8	3	
6913909020	장식용 식탁용품	8	3	
6913909090	기타	8	3	
6914101000	화분	8	3	
6914109000	기타	8	3	
6914901000	화분	8	3	
6914909000	기타	8	3	
7001001000	괴	5	0	
7001002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파유리	3	0	
7002100000	구	8	0	
7002201000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쿼츠웨어 제조에 사용되는 것	3	0	
7002209000	기타	8	0	
7002311000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쿼츠웨어 제조에 사용되는 것	3	0	
700231900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6903105000	노즐	8	0	
6903106000	플러그	8	0	
6903107000	관	8	0	
6903108000	봉	8	0	
6903109000	기타	8	0	
6903201000	레토트	8	0	
6903202000	도가니	8	0	
6903203000	반응그릇	8	0	
6903204000	머플	8	0	
6903205000	노즐	8	0	
6903206000	플러그	8	0	
6903207000	관	8	0	
6903208000	봉	8	0	
6903209000	기타	8	0	
6903901000	탄화규소 또는 지르콘을 기제로 한 것	8	0	
6903909010	레토트	8	0	
6903909020	도가니	8	0	
6903909030	반응그릇	8	0	
6903909040	머플	8	0	
6903909050	노즐	8	0	
6903909060	플러그	8	0	
6903909070	관	8	0	
6903909080	봉	8	0	
6903909090	기타	8	0	
6904100000	건축용 벽돌	8	3	
6904900000	기타	8	0	
6905100000	기와(지붕타일)	8	0	
6905901000	굴뚝통, 굴뚝갓 및 굴뚝용 내장재	8	0	
6905902000	건축용 장식품	8	0	
6905909000	기타	8	0	
6906001000	관, 도관 및 홈통	8	0	
6906002000	관의 연결구류	8	0	
6907101000	자기제의 것	8	3	
6907109000	기타	8	3	
6907901000	자기제의 것	8	3	
6907909000	기타	8	3	
6908101000	자기제의 것	8	3	
6908109000	기타	8	3	
6908901000	자기제의 것	8	3	
6908909000	기타	8	3	
6909110000	자기제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002320000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섭씨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타 유리제의 것	8	0	
7002390000	기타	8	0	
7003121000	두께가 2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2000	두께가 2 밀리미터 초과 3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3000	두께가 3 밀리미터 초과 4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4000	두께가 4 밀리미터 초과 5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5000	두께가 5 밀리미터 초과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6000	두께가 6 밀리미터 초과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7000	두께가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3191000	두께가 2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2000	두께가 2 밀리미터 초과 3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3000	두께가 3 밀리미터 초과 4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4000	두께가 4 밀리미터 초과 5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5000	두께가 5 밀리미터 초과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6000	두께가 6 밀리미터 초과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7000	두께가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3200000	망입 쉬트유리	8	0	
7003300000	프로파일	8	0	
7004201000	두께가 2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2000	두께가 2 밀리미터 초과 3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3000	두께가 3 밀리미터 초과 4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4000	두께가 4 밀리미터 초과 5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5000	두께가 5 밀리미터 초과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6000	두께가 6 밀리미터 초과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7000	두께가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4901000	두께가 2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2000	두께가 2 밀리미터 초과 3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3000	두께가 3 밀리미터 초과 4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4000	두께가 4 밀리미터 초과 5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5000	두께가 5 밀리미터 초과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6000	두께가 6 밀리미터 초과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7000	두께가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5101010	두께가 4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5101020	두께가 4 밀리미터 초과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5101030	두께가 6 밀리미터 초과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5101040	두께가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3	
7005102010	두께가 4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5102020	두께가 4 밀리미터 초과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5102030	두께가 6 밀리미터 초과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5102040	두께가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3	
7005109010	두께가 4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5109020	두께가 4 밀리미터 초과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5109030	두께가 6 밀리미터 초과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5109040	두께가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3	
7005211000	두께가 2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5212000	두께가 2 밀리미터 초과 3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5213000	두께가 3 밀리미터 초과 4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5214000	두께가 4 밀리미터 초과 5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5215000	두께가 5 밀리미터 초과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5216000	두께가 6 밀리미터 초과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5217010	두께가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5217020	두께가 10 밀리미터 초과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5217030	두께가 1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3	
700529101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	4	0	
7005291020	반도체 또는 평판 패널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용의 것	3	0	
7005291030	유기발광 디스플레이용의 것	4	0	
7005291091	맑은 유리	8	3	
7005291092	저철분 유리	8	3	
7005291099	기타	8	3	
700529201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	4	0	
7005292020	반도체 또는 평판 패널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용의 것	3	0	
7005292030	유기발광 디스플레이용의 것	4	0	
7005292091	맑은 유리	8	3	
7005292092	저철분 유리	8	3	
7005292099	기타	8	3	
7005293010	맑은 유리	8	3	
7005293020	저철분 유리	8	3	
7005293090	기타	8	3	
7005294010	맑은 유리	8	3	
7005294020	저철분 유리	8	3	
7005294090	기타	8	3	
7005295010	맑은 유리	8	3	
7005295020	저철분 유리	8	3	
7005295090	기타	8	3	
7005296010	맑은 유리	8	3	
7005296020	저철분 유리	8	3	
7005296090	기타	8	3	
7005297010	맑은 유리	8	3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013370000	기타	8	0	
7013410000	납 크리스탈제의 것	8	0	
7013420000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섭씨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리제의 것	8	0	
7013490000	기타	8	0	
7013910000	납 크리스탈제의 것	8	0	
7013990000	기타	8	0	
7014001000	실드빔 램프의 것	8	0	
7014009010	신호용 유리제품	8	0	
7014009020	유리제의 광학용품	8	0	
701510000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8	0	
7015901000	선글라스용의 것	8	0	
7015902000	시계용 유리 및 이와 유사한 것	8	0	
7015909000	기타	8	0	
7016100000	유리제의 입방체 및 기타 유리세공품(뒷면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모자이크용 또는 이와 유사한 장식용의 것에 한한다)	8	0	
7016901000	압축 또는 주형 유리제의 포장용 불록·슬래브·벽돌·스퀘어·타일 및 기타 제품(망입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건축용 또는 건설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	8	0	
7016909010	레드라이트	8	0	
7016909020	스테인드그라스	8	0	
7016909090	기타	8	0	
7017100000	석영유리제의 것	8	0	
7017200000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타 유리제의 것	8	0	
7017900000	기타	8	0	
7018101000	비드	8	0	
7018102000	모조진주	8	0	
7018103000	모조귀석과 반귀석	8	0	
7018104000	모조산호	8	0	
7018109000	기타	8	0	
7018200000	지름이 1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리제의 마이크로스피어	8	0	
7018901000	유리안구(인체용은 제외한다)	8	0	
7018909000	기타	8	0	
7019110000	단연사(길이가 50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0	
7019120000	로빙	8	0	
701919000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005297020	저철분 유리	8	3	
7005297090	기타	8	3	
7005298010	맑은 유리	8	3	
7005298020	저철분 유리	8	3	
7005298090	기타	8	3	
7005299010	맑은 유리	8	3	
7005299020	저철분 유리	8	3	
7005299090	기타	8	3	
7005300000	망입유리	8	3	
700600100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	4	0	
7006002000	반도체 또는 평판 패널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용의 것	3	0	
7006003000	유기발광 디스플레이용의 것	4	0	
7006009000	기타	8	0	
7007111000	두께가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7112000	두께가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3	
7007191000	두께가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7192000	두께가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3	
7007211000	총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8	0	
7007212000	총두께가 1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8	3	
7007291000	총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8	3	
7007292000	총두께가 1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8	3	
7008000000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닛	8	3	
7009100000	백미러(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8	0	
7009910000	틀이 붙지 아니한 것	8	3	
7009920000	틀이 붙은 것	8	3	
7010100000	앰플	8	0	
7010200000	마개, 뚜껑 및 기타 마개류	8	0	
7010900000	기타	8	0	
7011100000	전등용의 것	8	0	
7011201000	천연색용의 것	8	0	
7011209000	기타	8	0	
7011900000	기타	8	0	
7013100000	유리 도자제의 것	8	0	
7013220000	납 크리스탈제의 것	8	0	
7013280000	기타	8	0	
7013330000	납 크리스탈제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019310000	매트	8	0	
7019320000	얇은 쉬트(보일)	8	0	
7019390000	기타	8	3	
7019400000	로빙직물	8	3	
7019510000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	8	0	
7019520000	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평직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0 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 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에 한한다)	8	0	
7019590000	기타	8	0	
7019901000	글라스울	8	0	
7019909000	기타	8	0	
7020001011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으로 확산 및 산화로에 삽입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석영리엑터 튜브와 홀더	0	0	
7020001012	반도체 웨이퍼 제조에 사용되는 노용의 석영도가니	3	0	
7020001013	반도체용으로 쿼츠웨어 제조에 사용되는 것	3	0	
7020001019	기타	8	0	
7020001090	기타	8	0	
7020009000	기타	8	0	
7101101000	가공하지 아니한 것	8	0	
7101102000	가공한 것	8	0	
7101210000	가공하지 아니한 것	8	3	
7101220000	가공한 것	8	3	
7102100000	선별하지 아니한 것	1	0	
7102210000	원석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쪼갠 것	1	0	
7102290000	기타	5	0	
7102310000	원석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쪼갠 것	1	0	
7102390000	기타	5	0	
7103100000	원석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거칠게 성형한 것	1	0	
7103911000	공업용의 것	5	0	
7103919010	루비	5	0	
7103919020	사파이어	5	0	
7103919030	에메랄드	5	0	
7103991000	공업용의 것	5	0	
7103999010	오팔	5	0	
7103999020	비취	5	0	
7103999030	옥수	5	0	
7103999040	수정	5	0	
7103999090	기타	5	3	
7104100000	압전기용 석영	5	0	
7104201000	다이아몬드	5	0	
7104209000	기타	5	0	
7104901010	다이아몬드	5	0	
7104901020	인조수정	5	0	
7104901090	기타	5	0	
7104909010	다이아몬드	5	0	
7104909090	기타	5	3	
7105101000	천연의 것	5	0	
7105102000	합성의 것	5	0	
7105901000	석류석의 것	5	0	
7105909000	기타	5	0	
7106100000	분	3	0	
7106911000	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 퍼센트 이상인 것	3	0	
7106919000	기타	3	0	
7106921000	봉 및 형재	3	0	
7106922000	판, 쉬트 및 스트립	3	0	
7106923000	선	3	0	
7106929000	기타	3	0	
7107001000	봉 및 형재	3	0	
7107002000	판, 쉬트 및 스트립	3	0	
7107003000	선	3	0	
7107004000	관 및 중공봉	3	0	
7107009000	기타	3	0	
7108110000	분	3	0	
7108121000	럼프, 빌레트 및 입	3	0	
7108129000	기타	3	0	
7108131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3	0	
7108131090	기타	3	0	
7108139010	봉 및 형재	3	0	
7108139020	판, 쉬트 및 스트립	3	0	
7108139090	기타	3	0	
7108200000	화폐용의 것	0	0	
7109000000	금을 입힌 비(卑)금속 또는 은(반가공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	0	
7110110000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3	0	
7110190000	기타	3	0	
7110210000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3	0	
7110290000	기타	3	0	
7110310000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110390000	기타	3	0	
7110410000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3	0	
7110490000	기타	3	0	
7111000000	백금을 입힌 비(卑)금속, 은 또는 금(반가공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	0	
7112300000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	2	0	
7112911000	잔재물의 것	2	0	
7112919000	기타	3	0	
7112921000	잔재물의 것	2	0	
7112929000	기타	3	0	
7112991000	잔재물의 것	2	0	
7112992000	플라스틱의 웨이스트·페어링과 스크랩의 것	6.5	0	
7112999000	기타	3	0	
7113110000	은제의 것(기타 귀금속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7113191000	백금제의 것	8	0	
7113192000	금제의 것	8	0	
7113199000	기타	8	0	
7113201000	백금을 입힌 것	8	0	
7113202000	금을 입힌 것	8	0	
7113203000	은을 입힌 것	8	0	
7113209000	기타	8	0	
7114111000	식탁용의 것	8	0	
7114112000	화장실용의 것	8	0	
7114113000	사무실 및 책상용의 것	8	0	
7114114000	끽연용의 것	8	0	
7114119000	기타	8	0	
7114191000	식탁용의 것	8	0	
7114192000	화장실용의 것	8	0	
7114193000	사무실 및 책상용의 것	8	0	
7114194000	끽연용의 것	8	0	
7114199000	기타	8	0	
7114201000	식탁용의 것	8	0	
7114202000	화장실용의 것	8	0	
7114203000	사무실 및 책상용의 것	8	0	
7114204000	끽연용의 것	8	0	
7114209000	기타	8	0	
7115100000	촉매제(백금제의 와이어 클로드 또는 그릴상의 것에 한한다)	8	0	
7115901010	백금도가니	8	0	
7115901090	기타	8	0	
7115909010	금제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한다)	8	0	
7115909020	은제의 것(은을 입힌 금속을 포함한다)	8	0	
7115909090	기타	8	0	
7116101000	천연진주의 것	8	0	
7116102000	양식진주의 것	8	0	
7116201000	공업용의 것	8	0	
7116209010	신변장식용의 것	8	0	
7116209090	기타	8	0	
7117110000	커프링크 및 장식용 단추	8	0	
7117191000	목걸이	8	0	
7117192000	팔찌	8	0	
7117193000	귀걸이	8	0	
7117194000	브로우치	8	0	
7117195000	반지	8	0	
7117196000	신변장식용 체인	8	0	
7117199000	기타	8	0	
7117900000	기타	8	0	
7118100000	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	0	0	
7118901000	금화	0	0	
7118902000	은화	0	0	
7118909000	기타	0	0	
7201101000	주물용의 것	0	0	
7201102000	제강용의 것	0	0	
7201109000	기타	0	0	
720120000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0	0	
7201501000	합금선철	2	0	
7201502000	스피그라이즌	2	0	
7202110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5	5	
7202190000	기타	5	5	
7202210000	실리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3	0	
7202291000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 퍼센트 이상인 것	3	0	
7202299000	기타	3	0	
7202300000	페로실리코망간	5	5	
7202410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4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3	0	
7202490000	기타	3	0	
7202500000	페로실리코크로뮴	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202600000	페로니켈	3	0	
7202700000	페로몰리브데늄	3	0	
7202800000	페로텅스텐 및 페로실리코텅스텐	3	0	
7202910000	페로티타늄 및 페로실리코티타늄	3	0	
7202920000	페로바나듐	3	0	
7202930000	페로니오븀	3	0	
7202991000	인철(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5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3	0	
7202999000	기타	3	0	
7203100000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0	0	
7203900000	기타	1	0	
7204100000	주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7204210000	스테인리스강의 것	0	0	
7204290000	기타	0	0	
7204300000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7204410000	선삭, 셰이빙, 칩, 밀링웨이스트, 톱밥, 파일링, 트리밍 및 스탬핑(번들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7204490000	기타	0	0	
7204500000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0	0	
7205101000	쇼트	5	0	
7205102000	그리트	5	0	
7205109000	기타	5	0	
7205210000	합금강의 것	5	0	
7205290000	기타	5	0	
7206100000	잉곳	0	0	
7206900000	기타	0	0	
7207111000	블룸	0	0	
7207112000	빌레트	0	0	
7207121000	슬래브	0	0	
7207122000	쉬트바	0	0	
7207190000	기타	0	0	
7207201000	블룸	0	0	
7207202000	빌레트	0	0	
7207203000	슬래브	0	0	
7207204000	쉬트바	0	0	
7207209000	기타	0	0	
7208101000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7208109000	두께가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720825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259000	기타	0	0	
720826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269000	기타	0	0	
720827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279000	기타	0	0	
720836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369000	기타	0	0	
720837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379000	기타	0	0	
720838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389000	기타	0	0	
720839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399000	기타	0	0	
7208400000	코일상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하고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	0	0	
720851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519000	기타	0	0	
720852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529000	기타	0	0	
720853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539000	기타	0	0	
720854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549000	기타	0	0	
7208900000	기타	0	0	
720915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159000	기타	0	0	
720916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169000	기타	0	0	
720917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179000	기타	0	0	
720918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189000	기타	0	0	
720925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259000	기타	0	0	
720926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269000	기타	0	0	
720927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279000	기타	0	0	
720928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289000	기타	0	0	
7209900000	기타	0	0	
7210110000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210120000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7210200000	납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함석판을 포함한다)	0	0	
721030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0309000	기타	0	0	
7210410000	파형의 것	0	0	
721049101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0491090	기타	0	0	
721049901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0499090	기타	0	0	
7210500000	산화크로뮴 또는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0	
7210610000	알루미늄-아연 합금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0	
7210690000	기타	0	0	
7210700000	페인트한 것, 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0	0	
7210901000	니켈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0	
7210902000	동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0	
7210909000	기타	0	0	
7211130000	4 면을 압연한 것 또는 클로즈드박스패스로 한 것(폭이 15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 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하며, 코일상의 것과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0	0	
721114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1149000	기타	0	0	
721119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1199000	기타	0	0	
721123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1239000	기타	0	0	
721129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1299000	기타	0	0	
721190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1909000	기타	0	0	
7212101000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7212102000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721220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2209000	기타	0	0	
721230101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2301090	기타	0	0	
721230901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2309090	기타	0	0	
7212400000	페인트한 것, 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0	0	
7212501000	니켈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0	
7212502000	동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0	
7212509000	기타	0	0	
7212600000	클래드한 것	0	0	
721310000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 리브, 홈 또는 기타 변형이 있는 것	0	0	
7213200000	기타(쾌삭강의 것에 한한다)	0	0	
7213911010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25 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13911090	기타	0	0	
7213919000	기타	0	0	
7213991010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25 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13991090	기타	0	0	
7213999000	기타	0	0	
7214100000	단조한 것	0	0	
7214201000	철근	0	0	
7214209000	기타	0	0	
7214300000	기타(쾌삭강의 것에 한한다)	0	0	
7214910000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것	0	0	
7214991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6 퍼센트 미만인 것	0	0	
7214999000	기타	0	0	
7215100000	쾌삭강의 것(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7215500000	기타(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7215900000	기타	0	0	
7216101000	유형강	0	0	
7216102000	아이형강	0	0	
7216103000	에이치형강	0	0	
7216210000	엘형강	0	0	
7216220000	티형강	0	0	
7216310000	유형강	0	0	
7216320000	아이형강	0	0	
7216333000	높이가 300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7216334000	높이가 300 밀리미터 이상 6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7216335000	높이가 60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7216401000	엘형강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21922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퍼센트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19221090	기타	0	0	
7219229000	기타	0	0	
721923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퍼센트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19231090	기타	0	0	
7219239000	기타	0	0	
721924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퍼센트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19241090	기타	0	0	
7219249000	기타	0	0	
721931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퍼센트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19311090	기타	0	0	
7219319000	기타	0	0	
721932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퍼센트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19321090	기타	0	0	
7219329000	기타	0	0	
721933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퍼센트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19331090	기타	0	0	
7219339000	기타	0	0	
721934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퍼센트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19341090	기타	0	0	
7219349000	기타	0	0	
721935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퍼센트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19351090	기타	0	0	
7219359000	기타	0	0	
721990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퍼센트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19901090	기타	0	0	
7219909000	기타	0	0	
722011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퍼센트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20111090	기타	0	0	
7220119000	기타	0	0	
722012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퍼센트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퍼센트 이상인 것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216402000	티형강	0	0	
7216500000	기타 형강(열간압연, 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7216610000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0	0	
7216690000	기타	0	0	
7216910000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한 것	0	0	
7216990000	기타	0	0	
7217100000	도금 또는 도포하지 아니한 것(연마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7217200000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0	
7217301000	동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0	
7217309000	기타	0	0	
7217900000	기타	0	0	
7218101000	잉곳	0	0	
7218109000	기타	0	0	
7218911000	슬래브	0	0	
7218912000	쉬트바	0	0	
7218919000	기타	0	0	
7218991000	블룸	0	0	
7218992000	빌레트	0	0	
7218999000	기타	0	0	
721911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퍼센트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19111090	기타	0	0	
7219119000	기타	0	0	
721912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퍼센트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19121090	기타	0	0	
7219129000	기타	0	0	
721913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퍼센트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19131090	기타	0	0	
7219139000	기타	0	0	
721914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퍼센트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19141090	기타	0	0	
7219149000	기타	0	0	
721921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퍼센트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19211090	기타	0	0	
7219219000	기타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220121090	기타	0	0	
7220129000	기타	0	0	
722020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퍼센트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20201090	기타	0	0	
7220209000	기타	0	0	
722090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퍼센트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20901090	기타	0	0	
7220909000	기타	0	0	
72210000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0	0	
7222110000	횡단면이 원형인 것	0	0	
7222190000	기타	0	0	
7222200000	봉(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7222300000	기타 봉	0	0	
7222400000	형강	0	0	
7223000000	스테인리스강의 선	0	0	
7224101000	잉곳	0	0	
7224109000	기타	0	0	
7224901000	블룸	0	0	
7224902000	빌레트	0	0	
7224903000	슬래브	0	0	
7224904000	쉬트바	0	0	
7224909000	기타	0	0	
7225110000	방향성의 것	0	0	
7225190000	기타	0	0	
722530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30901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25309090	기타	0	0	
722540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40901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25409090	기타	0	0	
722550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509000	기타	0	0	
722591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91901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25919090	기타	0	0	
722592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929011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25929019	기타	0	0	
7225929091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25929099	기타	0	0	
722599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999000	기타	0	0	
7226110000	방향성의 것	0	0	
7226190000	기타	0	0	
7226200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6910000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0	0	
722692000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0	0	
7226991000	비정질 합금 박판(두께가 100 미크론 미만인 것에 한한다)	0	0	
7226992000	아연으로 전해도금 또는 전해도포한 것	0	0	
7226993000	기타 다른 방법으로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0	
7226999000	기타	0	0	
7227100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7200000	실리코망간강의 것	0	0	
7227901000	내열강의 것	0	0	
7227909000	기타	0	0	
7228100000	고속도강의 봉	0	0	
7228200000	실리코망간강의 봉	0	0	
7228300000	기타의 봉(열간압연, 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7228400000	기타의 봉(단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7228500000	기타의 봉(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7228600000	기타의 봉	0	0	
7228700000	형강	0	0	
7228800000	중공드릴봉	0	0	
7229200000	실리코망간강의 것	0	0	
7229901010	고속도강의 것	0	0	
7229901090	기타	0	0	
7229902010	고속도강의 것	0	0	
7229902090	기타	0	0	
7229909010	고속도강의 것	0	0	
7229909090	기타	0	0	
7301101000	유형	0	0	
7301109000	기타	0	0	
7301201000	유형강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305900000	기타	0	0	
7306110000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0	0	
7306190000	기타	0	0	
7306211000	케이싱	0	0	
7306212000	튜빙	0	0	
7306291000	케이싱	0	0	
7306292000	튜빙	0	0	
7306301010	아연도금한 것	0	0	
7306301020	아연 이외의 금속으로 도금 또는 클래드한 것	0	0	
7306301030	비금속으로 도포한 것	0	0	
7306301090	기타	0	0	
7306302010	아연도금한 것	0	0	
7306302020	아연 이외의 금속으로 도금 또는 클래드한 것	0	0	
7306302030	비금속으로 도포한 것	0	0	
7306302090	기타	0	0	
7306401000	바깥지름이 114.3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7306402000	바깥지름이 114.3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7306500000	기타(용접한 것에 한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기타 합금강제의 것에 한한다)	0	0	
7306611010	아연도금한 것	0	0	
7306611090	기타	0	0	
7306612000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0	0	
7306613000	기타 합금강제의 것	0	0	
7306691010	아연도금한 것	0	0	
7306691090	기타	0	0	
7306692000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0	0	
7306693000	기타 합금강제의 것	0	0	
7306901000	이중권 강관	0	0	
7306909000	기타	0	0	
7307110000	비가단주철제의 것	8	0	
7307190000	기타	8	3	
7307210000	플랜지	8	3	
7307221000	나선 가공한 슬리브(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0	0	
7307229000	기타	8	0	
7307230000	바트용접용 연결구	8	0	
7307290000	기타	8	0	
7307910000	플랜지	8	0	
7307921000	나선가공한 슬리브(철강제의 것에 한한다)	0	0	
7307929000	기타	8	0	
7307930000	바트용접용 연결구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301202000	에이치형강	0	0	
7301203000	아이형강	0	0	
7301209000	기타	0	0	
7302101010	열처리한 것	0	0	
7302101090	기타	0	0	
7302102010	열처리한 것	0	0	
7302102090	기타	0	0	
7302103010	열처리한 것	0	0	
7302103090	기타	0	0	
7302104010	열처리한 것	0	0	
7302104090	기타	0	0	
7302300000	첨단궤조, 교차구류, 전철봉과 기타 크로싱피스	8	0	
7302400000	계목판과 저판	0	0	
7302900000	기타	0	0	
7303001010	구상흑연 주철제의 것	8	0	
7303001090	기타	8	5	
7303002000	중공 프로파일	8	0	
7304110000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0	0	
7304190000	기타	0	0	
7304220000	스테인리스강제의 드릴파이프	0	0	
7304230000	기타 드릴파이프	0	0	
7304240000	기타(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0	0	
7304290000	기타	0	0	
7304310000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0	
7304390000	기타	0	0	
7304410000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0	
7304490000	기타	0	0	
7304510000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0	
7304590000	기타	0	0	
7304900000	기타	0	0	
7305111000	바깥지름이 406.4 밀리미터 초과 1,422.4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7305112000	바깥지름이 1,422.4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7305120000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에 한한다)	0	0	
7305190000	기타	0	0	
7305200000	유정용 또는 가스정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케이싱	0	0	
7305311000	서브머지드아크 용접한 것	0	0	
7305312000	전기저항 용접한것	0	0	
7305319000	기타	0	0	
7305390000	기타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307991000	나선가공한 것(도금여부를 불문한다)	8	0	
7307999000	기타	8	0	
7308100000	다리와 교량	0	0	
7308200000	탑과 격자주	8	0	
7308300000	문,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8	0	
7308400000	비계, 차단기, 지주 또는 굉도받침용 기구	8	0	
7308901000	수문	0	0	
7308909000	기타	0	0	
7309000000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저장조·탱크·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은 제외하고,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	3	
7310100000	용적이 50 리터 이상인 것	8	3	
7310210000	납땜 또는 크림핑으로 봉합되는 통	8	0	
7310290000	기타	8	0	
7311001000	용적이 30 리터 이하인 것	8	0	
7311002000	용적이 30 리터 초과 100 리터 이하인 것	8	0	
7311003000	용적이 100 리터를 초과하는 것	8	0	
7312101011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0	0	
7312101019	기타	0	0	
7312101091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0	0	
7312101092	스틸타이어 코드	0	0	
7312101099	기타	0	0	
7312102011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0	0	
7312102019	기타	0	0	
7312102091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0	0	
7312102092	스틸타이어 코드	0	0	
7312102099	기타	0	0	
7312900000	기타	0	0	
7313001000	유자선	0	0	
7313009000	기타	0	0	
7314120000	기계용 엔드리스밴드(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0	0	
7314140000	기타 직조한 클로드(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0	0	
7314190000	기타	0	0	
7314200000	그릴, 망 및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 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의 크기가 100 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0	0	
7314310000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314390000	기타	0	0	
7314410000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0	
7314420000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0	0	
7314490000	기타	0	0	
7314500000	익스팬디드메탈	0	0	
7315110000	롤러체인	8	3	
7315120000	기타체인	8	3	
7315190000	부분품	8	0	
7315200000	스키드체인	8	0	
7315810000	스터드링크	8	0	
7315820000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에 한한다)	8	0	
7315890000	기타	8	3	
7315900000	기타 부분품	8	0	
7316001000	닻	8	0	
7316002000	부분품	8	0	
7317001011	도금, 도포 또는 페인트한 것	0	0	
7317001019	기타	0	0	
7317001021	도금, 도포 또는 페인트한 것	0	0	
7317001029	기타	0	0	
7317002000	압정	0	0	
7317003000	제도용 또는 사무용 핀	0	0	
7317004000	파형 못	0	0	
7317005000	스테이플	0	0	
7317009000	기타	0	0	
7318110000	코치스크루	8	0	
7318120000	기타 목재용 스크루	8	0	
7318130000	스크루훅과 스크루링	8	0	
7318140000	셀프태핑 스크루	8	0	
7318151000	머신스크루	8	0	
7318152000	볼트	8	0	
7318153000	볼트와 너트(세트로 된 것에 한한다)	8	0	
7318159000	기타	8	0	
7318160000	너트	8	0	
7318190000	기타	8	5	
7318210000	스프링와셔와 기타 록와셔	8	0	
7318220000	기타 와셔	8	5	
7318230000	리벳	8	3	
7318240000	코터와 코터핀	8	0	
7318290000	기타	8	3	
7319200000	안전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7324101000	설거지통	8	0	
7324102000	세면대	8	0	
7324210000	주철제의 것(법랑제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7324291000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8	0	
7324299000	기타	8	0	
7324901000	화장용세트	8	0	
7324908000	기타	8	0	
7324909000	부분품	8	3	
7325100000	비가단주철제의 것	8	0	
7325910000	분쇄기용의 그라인딩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8	0	
7325991000	주철제의 것	8	0	
7325992000	주강제의 것	8	0	
7325993000	합금강제의 것	8	0	
7325999000	기타	8	0	
7326110000	분쇄기용의 그라인딩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8	0	
7326190000	기타	8	0	
7326200000	철강선제의 제품	8	3	
7326901000	방직기계용 보빈	8	0	
7326909000	기타	8	0	
7401001000	동의 매트	0	0	
7401002000	시멘트동(침전동)	0	0	
7402001000	정제하지 아니한 동	0	0	
7402002000	전해정제용의 동 양극	0	0	
7403110000	음극과 음극의 형재	3	3	
7403120000	와이어바	5	0	
7403130000	빌레트	5	0	
7403191000	슬래브	5	0	
7403192000	잉곳	5	0	
7403199000	기타	5	0	
7403210000	동-아연의 합금(황동)	5	0	
7403220000	동-주석의 합금(청동)	5	0	
7403291010	동-니켈의 합금(백동)	5	0	
7403291020	동-니켈-아연의 합금(양백)	5	0	
7403299000	기타	5	0	
7404000000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7405000000	동의 마스터얼로이	5	0	
7406100000	비층상조직의 분	8	0	
7406201000	층상조직의 분	8	0	
7406202000	플레이크	8	0	
7407100000	정제한 동의 것	8	0	
7407210000	동-아연 합금의 것(황동)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7319301000	반도체 웨이퍼 또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측정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핀	8	0	
7319309000	기타	8	0	
7319901010	수봉침	8	0	
7319901020	수편침	8	3	
7319901090	기타	8	3	
7319909000	기타	8	5	
7320101000	자동차용 판상 스프링	8	0	
7320102000	철도용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판상스프링	8	0	
7320109000	기타	8	0	
7320201000	자동차용의 것	8	0	
7320202000	충격 흡수용의 것	8	0	
7320203000	철도차량 연계완충기용의 것	8	0	
7320204000	가구용의 것	8	0	
7320209000	기타	8	0	
7320901000	평나선형 스프링	8	0	
7320909000	기타 스프링	8	0	
7321110000	가스연료용의 것 또는 가스와 기타 연료 겸용의 것	8	0	
7321120000	액체연료용의 것	8	0	
7321190000	기타(고체연료용의 기구를 포함한다)	8	0	
7321810000	가스연료용의 것 또는 가스와 기타 연료 겸용의 것	8	0	
7321820000	액체연료용의 것	8	0	
7321890000	기타(고체연료용의 기구를 포함한다)	8	0	
7321900000	부분품	8	0	
7322111000	방열기	8	0	
7322112000	부분품	8	0	
7322191000	방열기	8	0	
7322192000	부분품	8	3	
7322901000	태양열 집열기와 그 부분품	8	0	
7322909010	공기가열기	8	0	
7322909020	온풍배분기	8	0	
7322909030	부분품	8	3	
7323100000	철강의 울,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 패드, 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8	0	
7323910000	주철제의 것으로 법랑제가 아닌 것	8	0	
7323920000	주철제의 것으로 법랑제의 것	8	0	
7323930000	스테인리스강의 것	8	0	
7323940000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제의 것으로 법랑제의 것	8	0	
732399000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407291000	동-주석 합금의 것(청동)	8	0	
7407292010	동-니켈 합금의 것(백동)	8	0	
7407292020	동-니켈-아연 합금의 것(양백)	8	0	
7407299000	기타	8	0	
74081100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408190000	기타	8	0	
7408210000	동-아연 합금의 것(황동)	8	0	
7408221000	동-니켈 합금의 것(백동)	8	0	
7408222000	동-니켈-아연 합금의 것(양백)	8	0	
7408291000	동-주석 합금의 것(청동)	8	0	
7408299000	기타	8	0	
740911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	0	
7409119000	기타	8	0	
740919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	0	
7409199000	기타	8	0	
740921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	0	
7409219000	기타	8	0	
740929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	0	
7409299000	기타	8	0	
740931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	0	
7409319000	기타	8	0	
740939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	0	
7409399000	기타	8	0	
7409401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	0	
7409401090	기타	8	0	
7409402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	0	
7409402090	기타	8	0	
74099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	0	
7409909000	기타	8	0	
7410110000	정제한 동의 것	8	0	
7410120000	동합금의 것	8	0	
7410211000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것	8	0	
7410219000	기타	8	0	
7410221000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것	8	0	
7410229000	기타	8	0	
7411100000	정제한 동제의 것	8	0	
7411210000	동-아연 합금제의 것(황동)	8	0	
7411221000	동-니켈 합금제의 것(백동)	8	0	
7411222000	동-니켈-아연 합금제의 것(양백)	8	0	
7411291000	동-주석 합금제의 것(청동)	8	0	
7411299000	기타	8	3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412100000	정제한 동제의 것	3	0	
7412200000	동 합금제의 것	3	0	
7413000000	동제의 연선, 케이블, 엷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3	0	
7415101000	귀금속으로 도금, 피복 또는 도포한 것	8	0	
7415109000	기타	8	0	
7415210000	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8	0	
7415290000	기타	8	0	
7415330000	스크루, 볼트와 너트	8	0	
7415390000	기타	8	0	
7418110000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 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8	0	
7418191000	식탁용품, 주방용품	8	0	
7418192010	태양열 집열기(가정용에 사용되는 종류의 비전기식의 것에 한한다)	5	0	
7418192090	기타	8	0	
7418199010	태양열 집열기(가정용에 사용되는 종류의 비전기식의 것에 한한다)의 것	5	0	
7418199090	기타	8	0	
7418201000	위생용품	8	0	
7418202000	부분품	8	0	
7419101000	체인	8	0	
7419102000	부분품	8	0	
7419910000	주조, 주형, 압착 또는 단조된 것(이들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7419991010	클로드	8	0	
7419991090	기타	8	0	
7419992000	동제의 스프링	8	0	
7419999000	기타	8	0	
7501100000	니켈의 매트	0	0	
750120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8 퍼센트 이상인 것	2	10	
7501201090	기타	0	0	
7501209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8 퍼센트 이상인 것	2	10	
7501209090	기타	0	0	
7502101000	음극	3	10	
7502109000	기타	3	10	
7502200000	니켈 합금	3	0	
7503000000	니켈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7504001000	분	5	3	
7504002000	플레이크	5	3	
7505110000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의 것	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505120000	니켈 합금의 것	5	0	
7505210000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의 것	5	0	
7505220000	니켈 합금의 것	5	0	
7506101000	판, 쉬트 및 스트립	5	0	
7506102000	박	5	0	
7506201000	판, 쉬트 및 스트립	5	0	
7506202000	박	5	0	
7507110000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제의 것	8	0	
7507120000	니켈 합금제의 것	8	0	
7507200000	관연결구류	8	0	
7508100000	니켈선제의 클로드, 그릴 및 망	8	0	
7508901000	전기도금용 양극	8	0	
7508902010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제의 것	8	0	
7508902020	니켈 합금제의 것	8	0	
7508909000	기타	8	0	
7601100000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1	0	
7601201000	캐스팅 얼로이	1	0	
7601202000	빌레트	3	0	
7601209000	기타	1	0	
76020000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7603100000	비응상조직의 분	8	3	
7603201000	분	8	3	
7603202000	플레이크	8	3	
7604101000	봉	8	0	
7604102010	중공프로파일	8	0	
7604102090	기타	8	0	
7604210000	중공프로파일	8	0	
7604291000	봉	8	0	
7604299000	기타 프로파일	8	0	
76051100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605190000	기타	8	0	
76052100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605290000	기타	8	0	
76061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 퍼센트 이상인 것	8	5	
7606119000	기타	8	5	
7606120000	알루미늄 합금의 것	8	5	
76069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 퍼센트 이상인 것	8	5	
7606919000	기타	8	5	
7606920000	알루미늄 합금의 것	8	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6071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 퍼센트 이상인 것	8	0	
7607119000	기타	8	0	
760719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 퍼센트 이상인 것	8	0	
7607199000	기타	8	0	
760720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 퍼센트 이상인 것	8	0	
7607209000	기타	8	0	
7608100000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제의 것	8	3	
7608200000	알루미늄 합금제의 것	8	3	
7609000000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 엘보, 슬리브)	8	3	
7610100000	문,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8	3	
7610901000	구조물	8	3	
7610908000	기타	8	3	
7610909000	부분품	8	3	
7611000000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저장조, 탱크,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7	
7612100000	연질의 튜브형 용기	8	5	
7612901000	경질의 튜브형 용기	8	5	
7612909010	용적이 1 리터 미만인 것	8	5	
7612909020	용적이 1 리터 이상 20 리터 미만인 것	8	5	
7612909030	용적이 20 리터 이상인 것	8	5	
7613001000	압축가스용의 것	8	0	
7613002000	액화가스용의 것	8	0	
7614100000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8	0	
7614900000	기타	8	0	
7615110000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 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8	0	
7615191000	태양열 집열기와 그 부분품	5	0	
7615192000	식탁용품, 주방용품	8	0	
7615193000	기타 가정용 물품	8	0	
7615199000	부분품	8	0	
7615201000	위생용품	8	0	
7615202000	부분품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616100000	못, 압정, 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크루, 볼트, 너트, 스크루훅, 리벳, 코터, 코터핀, 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	8	0	
7616910000	알루미늄선제의 클로드, 그릴, 망 및 울타리	8	0	
7616991000	보빈	8	0	
7616999010	알루미늄 파우치	8	0	
7616999020	알루미늄 노브	8	0	
7616999090	기타	8	0	
7801101000	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 퍼센트 이상인 것	3	10	
7801109000	기타	3	10	
7801910000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기타 원소의 것	3	10	
7801991000	정제하지 아니한 연	1	10	
7801992010	연-주석 합금	3	10	
7801992090	기타	3	10	
7802000000	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7804111000	쉬트 및 스트립	8	0	
7804112000	박	8	0	
7804190000	기타	8	0	
7804201000	분	8	0	
7804202000	플레이크	8	0	
7806001000	연제용기	8	0	
7806002000	전기도금용 양극	8	0	
7806003010	봉	8	0	
7806003020	프로파일	8	0	
7806003030	선	8	0	
7806004010	관	8	0	
7806004020	관연결구류	8	0	
7806009000	기타	8	0	
7901110000	아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 퍼센트 이상인 것	3	10	
7901120000	아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 퍼센트 미만인 것	3	10	
7901201000	아연-알루미늄 합금	3	10	
7901202000	아연-동 합금	3	10	
7901209000	기타	3	10	
7902000000	아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7903100000	아연더스트	8	0	
7903901000	분	8	0	
7903902000	플레이크	8	0	
7904001000	봉	8	0	
7904002000	프로파일	8	0	
7904003000	선	8	0	
7905001000	판, 쉬트 및 스트립	8	0	
7905002000	박	8	0	
7907001000	아연제의 흠통, 지붕덮개, 채광 창틀 및 기타 가공한 건축용 재료	8	0	
7907002010	관	8	0	
7907002020	관연결구류	8	0	
7907009010	전기도금용 양극	8	0	
7907009090	기타	8	0	
8001100000	합금하지 아니한 주석	3	0	
8001200000	주석 합금	3	0	
8002000000	주석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8003001010	합금하지 아니한 것	8	0	
8003001090	기타	8	0	
8003002010	합금하지 아니한 것	8	0	
8003002090	기타	8	0	
8007001000	전기도금용 양극	8	0	
8007002000	판, 쉬트 및 스트립(두께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8	0	
8007003010	박	8	0	
8007003021	분	8	0	
8007003022	플레이크	8	0	
8007004000	관과 관연결구류(예: 커플링, 엘보, 슬리브)	8	0	
8007009000	기타	8	0	
8101100000	분	3	0	
8101940000	텅스텐의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3	0	
8101961000	전구 또는 전자관용의 스파이럴 필라멘트	8	0	
8101969000	기타	8	0	
810197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8101991010	봉	8	0	
8101991020	프로파일	8	0	
8101991030	판, 쉬트 및 스트립	8	0	
8101991040	박	8	0	
8101999000	기타	8	0	
8102100000	분	3	0	
8102940000	몰리브데늄의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3	0	
8102951000	봉	8	0	
8102952000	프로파일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102953000	판, 쉬트 및 스트립	8	0	
8102954000	박	8	0	
8102961000	전구 또는 전자관용의 스파이럴 필라멘트	8	0	
8102969000	기타	8	0	
810297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8102990000	기타	8	0	
8103201000	괴	3	0	
8103202000	분	3	0	
810330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8103900000	기타	8	0	
8104110000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8 퍼센트 이상인 것	3	0	
8104190000	기타	3	0	
810420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8104301000	줄밥, 연삭설 및 입	8	0	
8104302000	분	8	0	
8104901000	봉	8	0	
8104909000	기타	8	0	
8105201000	코발트의 괴	3	0	
8105202000	코발트 매트와 코발트 제련의 기타 중간 생산물	3	0	
8105203000	분	3	0	
810530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3	0	
8105900000	기타	3	0	
8106001010	비스머드의 괴	3	0	
8106001020	웨이스트와 스크랩	3	0	
8106001030	분	3	0	
8106009000	기타	3	0	
8107201000	카드뮴의 괴	3	0	
8107202000	분	3	0	
810730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3	0	
8107900000	기타	3	0	
8108201000	괴	3	0	
8108202000	분	3	0	
810830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3	0	
8108901000	판과 스트립	8	0	
8108902000	관	8	0	
8108909000	기타	8	0	
8109201000	괴	3	0	
8109202000	분	3	0	
810930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3	0	
8109901010	관	0	0	
8109901020	판, 쉬트 및 스트립	0	0	
8109901030	봉	0	0	
8109901090	기타	0	0	
8109909000	기타	3	0	
8110100000	안티모니의 괴, 분	3	0	
811020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3	0	
8110900000	기타	3	0	
81110000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3	0	
8112120000	괴, 분	3	0	
811213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3	0	
8112190000	기타	3	0	
8112210000	괴, 분	3	0	
811222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3	0	
8112290000	기타	3	0	
8112510000	괴, 분	3	0	
811252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3	0	
8112590000	기타	3	0	
8112921000	게르마늄	3	0	
8112922000	바나듐	3	0	
8112923000	갈륨	3	0	
8112924000	하프늄	3	0	
8112925000	인듐	3	0	
8112926000	니오븀(컬럼븀)	3	0	
8112927000	레늄	3	0	
8112929000	기타	3	0	
8112991000	게르마늄	3	0	
8112992000	바나듐	3	0	
8112993000	갈륨	3	0	
8112994000	하프늄	3	0	
8112995000	인듐	3	0	
8112996000	니오븀(컬럼븀)	3	0	
8112997000	레늄	3	0	
8112999000	기타	3	0	
8113000000	서메트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3	0	
8201100000	가래 및 삽	8	0	
8201200000	포크	8	0	
8201300000	곡괭이, 픽스, 괭이와 쇠스랑	8	0	
8201400000	도끼, 벌혹 및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8	0	
8201500000	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가금용 가위를 포함한다)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201600000	울타리전단기, 양손용 전지가위 및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8	0	
8201901000	낫	8	0	
8201902000	초절기	8	0	
8201903000	제재용 쇄기	8	0	
8201909000	기타	8	0	
8202101000	목재용의 것	8	0	
8202102000	금속용의 것	8	0	
8202109000	기타	8	3	
8202200000	띠톱의 날	8	0	
8202310000	작용하는 부분이 강제의 것	8	3	
8202391000	작용하는 부분이 텅스텐 카바이드제의 것	8	0	
8202392010	반도체 웨이퍼 또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개별 단위로 절단하는 기기에 사용되는 것	8	0	
8202392090	기타	8	0	
8202393000	작용하는 부분이 기타 재료제의 것	8	0	
8202399000	부분품	8	0	
8202400000	체인톱의 날	8	0	
8202911000	쇠톱의 날	8	0	
8202919000	기타	8	5	
8202990000	기타	8	3	
8203101000	톱날용의 것	8	0	
8203109000	기타	8	0	
8203201000	플라이어(절단용 플라이어를 포함한다)	8	5	
8203202000	집게	8	0	
8203203000	핀셋	8	3	
8203204000	못뽑기	8	0	
8203209000	기타	8	0	
8203300000	금속 절단용의 가위와 이와 유사한 공구	8	3	
8203401000	파이프커터	8	0	
8203402000	볼트크로퍼 및 클리퍼	8	0	
8203403000	천공펀치	8	0	
8203409000	기타	8	3	
8204110000	조정할 수 없는 것	8	0	
8204120000	조정할 수 있는 것	8	0	
8204200000	호환성 스패너소켓(손잡이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8205101000	드릴링용의 것	8	0	
8205102000	드레딩용의 것	8	0	
8205103000	태핑용의 것	8	0	
8205109000	기타	8	3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205200000	해머와 슬레즈해머	8	0	
8205300000	목재가공용의 대패, 끌, 둥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8	5	
8205400000	스크루드라이버	8	0	
8205510000	가정용공구	8	0	
8205591000	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	8	0	
8205592000	땜인두	8	0	
8205593000	그리스 건	8	0	
8205595000	광산용과 토목공사용 공구	8	0	
8205596000	미장 및 도장용 공구	8	3	
8205597000	시계제조용 공구	8	0	
8205599000	기타	8	3	
8205600000	블로램프	8	0	
8205701000	바이스	8	0	
8205702000	클램프	8	5	
8205709000	기타	8	3	
8205801000	모루	8	3	
8205802000	가반식 화덕	8	0	
8205803000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 또는 족답식 그라인딩휠	8	3	
8205809000	기타	8	0	
8205900000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8	0	
8206000000	제 8202 호부터 제 8205 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8	5	
8207130000	작용하는 부분이 서메트제인 것	8	0	
8207191000	작용하는 부분이 기타 재료제의 것	8	3	
8207199000	부분품	8	0	
8207201000	인발용의 것	8	0	
8207202000	압출용의 것	8	0	
8207301000	프레싱용의 것	8	0	
8207302000	스탬핑용의 것	8	0	
8207303000	펀칭용의 것	8	0	
8207309000	기타	8	0	
8207401000	태핑용의 것	8	0	
8207402000	드레딩용의 것	8	0	
8207409000	기타	8	0	
8207501010	고속도강제의 것	8	0	
8207501090	기타	8	5	
8207502000	브레이스비트	8	0	
8207509000	기타	8	5	
8207601000	리머	8	3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212900000	기타의 부분품	8	0	
8213001000	가정용 또는 사무용 가위	8	0	
8213002010	재단용의 것	8	0	
8213002020	이발용의 것	8	0	
8213002090	기타	8	0	
8213003000	매니큐어용 가위	8	0	
8213004000	가위날	8	0	
8213009000	기타	8	0	
8214101000	연필깎이	8	0	
8214109000	기타	8	0	
8214200000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8	0	
8214901000	조발기	8	0	
8214902000	정육점 또는 주방용 칼붙이, 초퍼 및 민싱용 칼	8	0	
8214909000	기타	8	0	
82151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한 가지 물품은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에 한한다)	8	0	
82152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기타의 세트	8	0	
8215911000	스푼	8	0	
8215912000	포크	8	0	
8215913000	국자와 스키머	8	0	
8215914000	생선용 칼과 버터용 칼	8	0	
8215915000	각종 집게	8	0	
8215919000	기타	8	0	
8215991000	스푼	8	0	
8215992000	포크	8	0	
8215993000	국자와 스키머	8	0	
8215994000	생선용 칼과 버터용 칼	8	0	
8215995000	각종 집게	8	0	
8215999000	기타	8	0	
8301100000	자물쇠	8	0	
8301200000	자동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자물쇠	8	0	
8301300000	가구에 사용되는 종류의 자물쇠	8	0	
8301401010	디지털 도어 록	8	0	
8301401090	기타	8	0	
8301409000	기타	8	0	
8301500000	유금과 유금이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8	0	
8301600000	부분품	8	0	
8301700000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8	0	
8302100000	경첩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207602000	랩	8	0	
8207603000	브로치	8	0	
8207609000	기타	8	3	
8207701000	기어커터	8	5	
8207702000	밀링커터	8	0	
8207703000	기어커팅 호브	8	0	
8207704000	로타리파일	8	3	
8207709000	기타	8	0	
8207801000	선반용 공구	8	3	
8207809000	기타	8	3	
8207901000	다이아몬드 공구	8	3	
8207909000	기타	8	3	
8208100000	금속 가공용의 것	8	0	
8208200000	목재 가공용의 것	8	0	
8208300000	주방용 기구 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의 것	8	0	
8208400000	농업, 원예 또는 임업용 기계의 것	8	0	
8208900000	기타	8	0	
8209001010	텅스텐 카바이드제의 것으로 감마코팅 처리된 것	8	5	
8209001040	서메트제의 것	8	0	
8209001090	기타	8	0	
8209002010	텅스텐 카바이드제의 것	8	3	
8209002040	서메트제의 것	8	0	
8209002090	기타	8	3	
8210001000	분쇄기 및 마쇄기	8	0	
8210002000	추출기 및 압착기	8	0	
8210003000	비터 및 믹서	8	0	
8210004000	세절기 및 커터	8	0	
8210005000	오프너, 코르커 및 실러	8	0	
8210008000	기타 가정용 식품가공기기	8	0	
8210009000	부분품	8	0	
82111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8	0	
8211910000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8	0	
8211920000	칼날이 고정된 기타의 칼	8	0	
8211930000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8	0	
8211940000	칼날	8	0	
8211950000	비(卑)금속제의 손잡이	8	0	
8212100000	면도기	8	0	
8212200000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로서 스트립상의 것을 포함한다)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3111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8	0	
8311109000	기타	8	0	
83112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8	0	
8311209000	기타	8	0	
83113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8	0	
8311309010	납-주석 합금의 땜납	8	0	
8311309090	기타	8	0	
83119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8	0	
8311909000	기타	8	0	
8401100000	원자로	0	0	
8401200000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와 그 부분품	0	0	
8401300000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연료체(카트리지)	0	0	
8401400000	원자로의 부분품	0	0	
84021100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을 초과하는 수관보일러	8	3	
84021200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 이하인 수관보일러	8	0	
8402191000	열매체보일러	8	0	
8402199000	기타	8	0	
8402200000	과열수보일러	8	0	
8402901000	증기발생보일러의 것	8	0	
8402902000	과열수보일러의 것	8	0	
8403101000	중앙난방용의 보일러로서 유류사용의 것	8	0	
8403102000	중앙난방용의 보일러로서 석탄사용의 것	8	0	
8403103000	중앙난방용의 보일러로서 가스사용의 것	8	0	
8403109000	기타	8	0	
8403900000	부분품	8	0	
8404101000	연료절약기	8	0	
8404102000	과열기	8	0	
8404103000	그을음제거기	8	0	
8404104000	가스회수기	8	0	
8404109000	기타	8	0	
8404200000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8	0	
8404901000	보일러용의 응축기의 것	8	0	
8404902000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의 것	8	0	
8404909000	기타	8	0	
8405101000	발생로가스 발생기	8	0	
8405102000	수성가스 발생기	8	3	
8405103000	아세틸렌가스 발생기	8	0	
8405104000	산소 발생기	8	3	
8405109000	기타	8	0	
8405901000	발생로가스 발생기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302200000	카스터	8	0	
8302300000	자동차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8	0	
8302411000	문 또는 창에 적합한 것	8	0	
8302419000	기타	8	0	
8302420000	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8	0	
8302491000	트렁크, 슈트케이스 또는 이와 유사한 여행용구에 적합한 것	8	0	
8302499000	기타	8	0	
8302500000	모자걸이, 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8	0	
8302600000	자동도어 폐지기	8	0	
8303001000	금고	8	0	
8303009000	기타	8	0	
8304000000	비(卑)금속제의 서류정리함, 카드인덱스함, 페이퍼트레이, 페이퍼레스트, 펜트레이, 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 및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 또는 책상용 비품(제 9403 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8	0	
8305100000	루스-리프식 바인더 또는 서류철용 피팅	8	0	
8305200000	스트립상의 스테이플	8	0	
830590000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8	0	
8306100000	벨, 징 및 이와 유사한 것	8	0	
8306210000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8	0	
8306290000	기타	8	0	
8306301000	사진틀, 그림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8	0	
8306302000	비금속제의 거울	8	0	
8307100000	철강제의 것	8	0	
8307900000	기타 비(卑)금속제의 것	8	0	
8308101000	훅	8	0	
8308102000	아이 및 아이릿	8	0	
8308200000	관리벳 또는 이고리벳	8	0	
8308901000	유금 및 유금이 붙은 프레임	8	0	
8308902000	버클 및 버클유금	8	0	
8308903000	구슬	8	0	
8308904000	스팽글	8	0	
8308909000	기타	8	0	
8309100000	크라운코르크	8	0	
8309901000	캔뚜껑(E.O.E)	8	0	
8309909000	기타	8	0	
8310000000	비(卑)금속제의 사인판, 명판, 주소판 및 이와 유사한 판, 숫자, 문자 및 기타의 표지판(제 94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05902000	수성가스 발생기의 것	8	0	
8405903000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의 것	8	0	
8405904000	산소 발생기의 것	8	0	
8405909000	기타	8	0	
8406103000	출력이 2 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5	0	
8406109000	기타	5	0	
8406811000	출력이 40 메가와트 초과 100 메가와트 이하인 것	5	0	
8406812000	출력이 100 메가와트 초과 300 메가와트 이하인 것	5	5	
8406813000	출력이 300 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5	5	
8406820000	출력이 40 메가와트 이하인 것	5	0	
8406901000	선박추진용 증기터빈의 것	8	0	
8406909000	기타	8	3	
8407100000	항공기용 엔진	0	0	
8407210000	아웃보드 모터	8	0	
8407290000	기타	8	3	
8407311000	모터사이클의 것	8	0	
8407319000	기타	8	0	
8407321000	모터사이클의 것	8	0	
8407329000	기타	8	0	
8407331000	모터사이클의 것	8	0	
8407339000	기타	8	0	
8407341000	모터사이클의 것	8	0	
8407349000	기타	8	0	
8407901000	철도용 기관차의 것	0	0	
8407909000	기타	8	0	
8408101000	출력이 3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8	0	
8408102000	출력이 300 킬로와트 초과 2,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8	0	
8408103000	출력이 2,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	0	
8408201000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8	0	
8408202000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초과 2,000 시시 이하인 것	8	0	
8408203000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 초과 4,000 시시 이하인 것	8	0	
8408204000	실린더용량이 4,000 시시 초과 10,000 시시 이하인 것	8	0	
8408205000	실린더용량이 10,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8	0	
8408901010	철도용기관차의 내연기관	0	0	
8408901090	기타	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08909010	선박용 내연기관	8	0	
8408909021	400 킬로와트 이상 출력의 발전기용의 것[분당 회전수(알피엠)가 1,500 또는 1,800 인 것에 한한다]	4	0	
8408909029	기타	8	0	
8408909030	제 8429 호용의 내연기관	8	0	
8408909090	기타	8	0	
8409100000	항공기 엔진용의 것	5	0	
8409911000	제 87 류의 차량용의 것	8	0	
8409912000	아웃보드 모터의 것	8	0	
8409919000	기타	8	0	
8409991000	철도용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5	0	
8409992000	제 87 류의 차량용의 것	8	3	
8409993010	출력이 300 킬로와트 이하인 내연기관의 것	8	0	
8409993020	출력이 300 킬로와트 초과 2,000 킬로와트 이하인 내연기관의 것	8	0	
8409993030	출력이 2,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내연기관의 것	8	0	
8409999010	발전용의 것	8	3	
8409999090	기타	8	3	
8410111000	수력터빈	0	0	
8410119000	기타	8	7	
8410120000	동력이 1,000 킬로와트 초과 10,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0	
8410130000	동력이 10,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	0	
8410901010	수력터빈의 것	0	0	
8410901090	기타	8	0	
8410909010	수력터빈의 것	0	0	
8410909090	기타	8	0	
841111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11119010	선박용의 것	8	0	
8411119090	기타	8	0	
841112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11129010	선박용의 것	8	0	
8411129090	기타	8	0	
841121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11219010	선박용의 것	8	0	
8411219090	기타	8	0	
841122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11229010	선박용의 것	8	0	
841122909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41181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11819010	선박용의 것	8	0	
8411819090	기타	8	0	
841182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11829010	선박용의 것	8	0	
8411829090	기타	8	3	
841191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11919000	기타	8	3	
841199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11999000	기타	8	3	
8412101010	램제트 또는 펄스제트 엔진	5	0	
8412101090	기타	5	0	
8412109000	기타	8	0	
8412211000	액압실린더	8	3	
8412219000	기타	8	3	
8412290000	기타	8	0	
8412310000	리니어 액팅식의 것(실린더)	8	0	
8412390000	기타	8	0	
8412800000	기타	8	3	
8412901010	램제트 또는 펄스제트 엔진의 것	5	0	
8412901090	기타	5	0	
8412902000	수력엔진의 것	0	0	
8412909000	기타	8	0	
8413110000	연료 또는 윤활유 급유용의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의 것에 한한다)	8	0	
8413190000	기타	8	7	
8413200000	수지식 펌프(소호 제 8413.11 호 또는 제 8413.19 호의 것은 제외한다)	8	0	
8413301000	항공기의 것	8	0	
8413302000	철도용 기관차의 것	8	0	
8413303000	선박의 것	8	0	
8413304000	제 87 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것	8	3	
8413309000	기타	8	0	
8413400000	콘크리트 펌프	8	0	
8413504000	수영장용 펌프	8	0	
8413509010	플런저펌프	8	0	
8413509020	피스톤펌프	8	5	
8413509030	다이아프램펌프	8	0	
8413509090	기타	8	5	
8413604000	수영장용 펌프	8	0	
8413609010	기어펌프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413609020	베인펌프	8	0	
8413609030	스크루펌프	8	0	
8413609090	기타	8	5	
8413703000	수영장용 펌프	8	0	
8413709010	터빈펌프	8	0	
8413709020	볼류트 펌프	8	0	
8413709090	기타	8	5	
8413811000	수영장용 펌프	8	0	
8413819000	기타	8	3	
8413820000	액체엘리베이터	8	3	
8413911000	연료 또는 윤활유 급유용 펌프의 것	8	5	
8413912000	내연기관의 것	8	3	
8413913000	왕복펌프의 것	8	3	
8413914000	원심펌프의 것	8	3	
8413915000	로타리펌프의 것	8	3	
8413919000	기타	8	3	
8413920000	액체 엘리베이터의 것	8	0	
8414101000	항공기용의 것	8	0	
8414109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도달진공도가 9×10-³토르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0	
8414109090	기타	8	3	
8414200000	손 또는 발 작동식의 기체펌프	8	0	
8414301000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미만인 것	8	0	
8414302000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이상인 것	8	0	
8414400000	예인용의 바퀴달린 섀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8	3	
8414511000	항공기용의 것	8	0	
8414519000	기타	8	0	
8414591000	항공기용의 것	8	0	
8414599000	기타	8	3	
8414601000	항공기용의 것	8	0	
8414609000	기타	8	0	
8414801000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8	0	
8414809110	항공기용의 것	8	0	
8414809190	기타	8	3	
8414809210	사용동력이 74.6 킬로와트 미만인 것	8	5	
8414809220	사용동력이 74.6 킬로와트 이상 373 킬로와트 미만인 것	8	3	
8414809230	사용동력이 373 킬로와트 이상인 것	8	3	
8414809900	기타	8	3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14901000	팬과 후드의 것	8	0	
8414909010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의 것	8	0	
8414909020	기체압축기의 것(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것은 제외한다)	8	3	
8414909090	기타	8	3	
8415101011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미만인 것	8	0	
8415101012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이상인 것	8	0	
8415101021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미만인 것	8	0	
8415101022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이상인 것	8	0	
8415102010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미만인 것	8	0	
8415102020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이상인 것	8	0	
8415200000	자동차용의 것(탑승자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	8	0	
8415810000	냉각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	8	5	
8415820000	기타(냉각유닛을 결합한 것에 한한다)	8	3	
8415830000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아니한 것	8	3	
8415900000	부분품	8	0	
8416101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 리터 이하인 것	8	3	
8416102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 리터 초과 1,500 리터 미만인 것	8	0	
8416103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1,500 리터 이상인 것	8	0	
8416201000	노용 버너로서 분쇄한 고체연료용의 것	8	0	
8416202000	노용 버너로서 기체연료용의 것	8	7	
8416209000	기타	8	7	
8416300000	기계식 스토커(이들의 기계식 불판, 기계식 회배출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8	0	
8416901000	노용 버너의 것	8	7	
8416909000	기타	8	7	
8417101010	철광석용의 것	8	0	
8417101090	기타	8	0	
8417102010	철강용의 것	8	5	
8417102090	기타	8	3	
8417200000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의 오븐을 포함한다)	8	0	
8417801010	시멘트용의 것	8	0	
8417801020	유리용의 것	8	0	
8417801030	도자기용의 것	8	0	
8417801090	기타	8	3	
8417802000	이화학용의 것	8	3	
8417809000	기타	8	3	
8417900000	부분품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18101010	용량이 200 리터 이하인 것	8	0	
8418101020	용량이 200 리터 초과 400 리터 이하인 것	8	0	
8418101030	용량이 400 리터를 초과하는 것	8	0	
8418109000	기타	8	0	
8418211000	용량이 200 리터 미만인 것	8	0	
8418212000	용량이 200 리터 이상 400 리터 미만인 것	8	0	
8418213000	용량이 400 리터 이상인 것	8	0	
8418291000	흡수식의 것(전기식의 것에 한한다)	8	0	
8418299000	기타	8	0	
8418300000	체스트형의 냉동고(용량이 800 리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0	
8418400000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 리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3	
8418501000	쇼케이스	8	0	
8418509000	기타	8	3	
8418610000	열펌프(제 8415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8	3	
8418691000	혈액 저장용 냉장고	8	3	
8418692010	아이스크림 제조기	8	0	
8418692020	아이스큐버	8	0	
8418692030	냉수기	8	0	
8418692090	기타	8	0	
8418693000	열펌프	8	0	
8418910000	냉장 또는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가구	8	0	
8418991000	가정형 냉장고의 것	8	0	
8418999000	기타	8	3	
8419110000	가스식의 즉시식 물가열기	8	0	
8419190000	기타	8	3	
8419200000	내과용, 외과용 또는 이화학용의 살균기	0	0	
8419310000	농산물용의 것	8	3	
8419320000	목재,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용의 것	8	0	
841939100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스핀 드라이어	3	0	
8419399000	기타	8	7	
8419400000	증류기 또는 정류기	8	3	
8419501000	항공기용의 것	8	0	
8419509000	기타	8	3	
8419600000	기체 액화용의 기기	8	0	
8419810000	뜨거운 음료제조용 또는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의 것	8	0	
8419891000	인조섬유 제조용 중합기	8	0	
8419899010	가열기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21311000	제 87 류 차량의 내연기관의 것	8	0	
8421312000	항공기용의 것	8	0	
8421319000	기타	8	3	
8421391000	가정형의 것	8	3	
8421392000	제 87 류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용의 것	8	3	
8421399010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의 것	8	3	
842139902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8421399030	항공기용의 것	8	0	
8421399090	기타	8	3	
8421910000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8	0	
8421991000	제 87 류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용의 것	8	0	
8421999010	내연기관용의 여과기 또는 청정기의 것	8	0	
8421999020	정수기 필터	8	0	
842199903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8421999090	기타	8	0	
8422110000	가정형의 것	8	0	
8422190000	기타	8	3	
8422200000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8	0	
8422301000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충전용 기계	8	0	
8422302000	병 또는 기타 용기의 봉함용 또는 봉지용 기계	8	0	
8422303000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캡슐 취부용 또는 레이블 첨부용 기계	8	5	
8422304000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8	0	
8422309000	기타	8	0	
8422404000	열수축포장기계	8	0	
8422409010	자동포장기계	8	0	
8422409020	자동결속기	8	0	
8422409030	진공포장기	8	0	
8422409090	기타	8	0	
8422901000	접시세척기의 것	8	3	
8422902000	기타 포장기계의 것	8	7	
8422909000	기타	8	7	
8423100000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 가정형의 저울	8	0	
8423201000	컨베이어 스케일	8	0	
8423202000	휘이드 미터 또는 휘이드웨이어	8	0	
8423209000	기타	8	0	
8423300000	정량저울과 설정된 무게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저울(호퍼스케일을 포함한다)	8	0	
8423810000	최대 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 이하인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19899020	냉각기	8	3	
8419899030	증발기	8	0	
8419899040	응축기	8	0	
8419899050	태양열 집열기 및 그 장치	8	0	
8419899060	고온 또는 저온항온기	8	3	
8419899070	항온항습기	8	5	
8419899080	공기조절기	8	3	
8419899090	기타	8	0	
8419901000	인조섬유 제조용 증합기의 것	8	0	
8419909010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의 것	8	0	
8419909020	뜨거운 음료제조용 기기의 것 또는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 기기의 것	8	5	
8419909030	공기조절용 기기의 것	8	3	
8419909040	내과용, 외과용 또는 이화학용의 살균기의 것	0	0	
8419909090	기타	8	3	
8420101000	제지용의 것	8	3	
8420102000	직물용의 것	8	0	
8420103000	가죽용의 것	8	0	
8420104000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것	8	3	
8420109000	기타	8	0	
8420910000	실린더	8	0	
8420990000	기타	8	0	
8421110000	크림분리기	8	0	
8421120000	의류탈수기	8	0	
8421191000	내과용, 외과용 또는 이화학용의 것	8	3	
8421192000	식품공업용의 것	8	0	
8421193000	석유화학공업용의 것	8	0	
8421199000	기타	8	0	
8421211000	가정형의 것	8	0	
8421219010	수영장용 여과 또는 청정기	8	0	
8421219020	반도체 제조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	3	0	
8421219090	기타	8	3	
8421220000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8	5	
8421231000	제 87 류 차량의 내연기관의 것	8	0	
8421232000	항공기용의 것	8	0	
8421239000	기타	8	0	
8421291000	낙농용의 것	8	0	
8421292000	유해성 폐수처리용의 것	8	3	
8421293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8421294000	항공기용의 것	8	0	
8421299000	기타	8	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23820000	최대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 초과 5,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8	0	
8423891000	트럭 스케일	8	0	
8423899000	기타	8	3	
8423901010	정도등급을 가진 분동	8	0	
8423901090	기타	8	0	
8423909000	저울의 부분품	8	0	
842410000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3	
8424201000	스프레이 건	8	3	
8424202010	로보트형의 것	8	3	
8424202090	기타	8	3	
8424209000	기타	8	3	
8424301000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	8	0	
8424302000	고압증기 세척기	8	0	
8424309000	기타	8	0	
8424811000	자주식 방제기	8	0	
8424812000	기타 방제기	8	3	
8424819000	기타	8	3	
842489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8424899000	기타	8	7	
8424901000	소화기의 것	8	3	
8424902000	스프레이 건의 것	8	7	
8424903000	방제기의 것	8	0	
8424909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8424909090	기타	8	0	
8425111010	체인블록	0	0	
8425111090	기타	0	0	
8425112010	체인블록	0	0	
8425112090	기타	0	0	
8425190000	기타	0	0	
8425311000	갱구용 와인딩 기어, 윈치(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0	0	
8425319000	기타	0	0	
8425391000	갱구용 와인딩 기어, 윈치(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0	0	
8425399000	기타	0	0	
8425410000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	0	0	
8425421000	양하중량이 10 메트릭톤 이하인 것	0	0	
8425422000	양하중량이 10 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0	0	
8425491000	양하중량이 10 메트릭톤 이하인 것	0	0	
8425492000	양하중량이 10 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0	0	
8426110000	고정식의 천장주행 크레인	0	0	
8426121000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	0	0	
8426122000	스트래들 캐리어	0	0	
8426190000	기타	0	0	
8426200000	타워크레인	0	0	
8426301000	문형 크레인	0	0	
8426302000	정치형 지브 크레인	0	0	
8426410000	타이어가 달린 것	0	0	
8426491000	신축붐식의 것	0	0	
8426492000	앵글식의 것	0	0	
8426499000	기타	0	0	
8426910000	도로주행차량에 장착하도록 설계제작된 것	0	0	
8426991000	선박의 데릭	0	0	
8426999000	기타	0	0	
8427101000	카운트 밸런스식의 것	8	7	
8427102000	카운트 밸런스식이 아닌 것	8	3	
8427109000	기타	8	3	
8427201010	적재중량이 3 톤 이하인 것	8	5	
8427201020	적재중량이 3 톤을 초과하는 것	8	3	
8427209000	기타	8	3	
8427901000	수동식 팰리트 트럭	8	5	
8427909000	기타	8	0	
8428101000	리프트	0	0	
8428102000	스킵호이스트	0	0	
8428201000	뉴매틱 엘리베이터	0	0	
8428202000	뉴매틱 컨베이어	0	0	
8428310000	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제작된 것	0	0	
8428320000	기타(버켓형의 것에 한한다)	0	0	
8428331010	분당속도가 240 미터 미만인 것	0	0	
8428331020	분당속도가 240 미터 이상인 것	0	0	
8428332000	컨베이어	0	0	
8428390000	기타	0	0	
8428401000	에스컬레이터	0	0	
8428402000	무빙 워크웨이(이동식 보도)	0	0	
8428600000	텔레페릭·의자 양하기·스키용 드래그라인, 퓨니쿨러용의 견인장치	0	0	
8428901000	광산용 왜건푸셔, 기관차 또는 화차의 트레버서, 화차 경사기 및 이와 유사한 철도화차 취급 장비	0	0	
8428909000	기타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29111000	불도저	0	0	
8429112000	앵글도저	0	0	
8429190000	기타	0	0	
8429200000	그레이더와 레벨러	0	0	
8429300000	스크레이퍼	0	0	
8429401000	탬핑머신	0	0	
8429402000	로드롤러	0	0	
8429511010	로우더	0	0	
8429511020	백호우 로우더	0	0	
8429511030	스키드스티어 로우더	0	0	
8429511090	기타	0	0	
8429519000	기타	0	0	
8429521010	휠 타입의 것	0	0	
8429521020	무한궤도식의 것	0	0	
8429521090	기타	0	0	
8429529000	기타	0	0	
8429591000	메커니컬 셔블	0	0	
8429599000	기타	0	0	
8430100000	항타기와 항발기	0	0	
8430200000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로어	0	0	
8430310000	자주식의 것	0	0	
8430390000	기타	0	0	
8430411000	천공용 기계	0	0	
8430412000	시굴용 기계	0	0	
8430491000	시추기	0	0	
8430499000	기타	0	0	
8430500000	기타의 기계(자주식의 것에 한한다)	0	0	
8430610000	탬핑용 또는 콤팩팅용의 기계	0	0	
8430690000	기타	0	0	
8431100000	제 8425 호의 기계의 것	0	0	
8431200000	제 8427 호의 기계의 것	8	0	
8431310000	리프트, 스킵호이스트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것	0	0	
8431390000	기타	0	0	
8431411000	엑스커베이터의 것	0	0	
8431419000	기타	0	0	
8431420000	불도저 또는 앵글도저의 블레이드	0	0	
8431430000	소호 제 8430.41 호 또는 제 8430.49 호의 천공 또는 시굴용 기계의 부분품	0	0	
8431491000	유압브레이커	0	0	
8431492000	크라샤	0	0	
8431499000	기타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32100000	플라우(쟁기)	0	0	
8432210000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0	0	
8432291000	스카리파이어	0	0	
8432292000	제초기	0	0	
8432299000	기타	0	0	
8432301000	파종기	0	0	
8432302000	식부기	0	0	
8432303000	이식기	0	0	
8432309000	기타	0	0	
8432401000	퇴비살포기	0	0	
8432402000	비료살포기	0	0	
8432800000	기타의 기계	0	0	
8432901000	플라우(쟁기)의 것	0	0	
8432902000	자동경운기의 것	0	0	
8432909000	기타	0	0	
8433110000	동력식의 것(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0	0	
8433190000	기타	0	0	
8433200000	기타의 풀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의 커터바를 포함한다)	0	0	
8433300000	기타의 건초제조용 기계	0	0	
8433400000	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픽업결속기를 포함한다)	0	0	
8433510000	수확·탈곡 겸용기	0	0	
8433520000	기타의 탈곡기	0	0	
8433530000	구경 또는 괴경의 수확기(근채 수확기)	0	0	
8433590000	기타	0	0	
8433601000	조란 선별기	0	0	
8433609010	농산물 선별기	0	0	
8433609090	기타	0	0	
8433901000	수확·탈곡 겸용기의 것	0	0	
8433902000	건초 또는 풀베는 기계의 것	0	0	
8433909000	기타	0	0	
8434100000	착유기	0	0	
8434201000	균질기	0	0	
8434209000	기타	0	0	
8434901000	착유기의 것	0	0	
8434902000	균질기의 것	0	0	
8434909000	기타	0	0	
8435101000	과즙 추출용의 프레스	8	0	
8435102000	과즙 추출용의 크러셔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35103000	과즙음료 제조용의 균질기	8	0	
8435109000	기타	8	3	
8435900000	부분품	8	0	
8436101000	사료절단기	8	0	
8436102000	사료분쇄기	8	0	
8436103000	사료배합기	8	3	
8436109000	기타	8	0	
8436211000	부란기	8	0	
8436219000	기타	8	0	
8436290000	기타	8	0	
8436800000	기타의 기계	8	3	
8436910000	가금 사육용 기계 또는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8	0	
8436990000	기타	8	0	
8437101000	목초종자 정선기	8	0	
8437109000	기타	8	0	
8437801000	제분업용 기계	8	0	
8437802000	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가공기계	8	0	
8437901000	종자, 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세정, 분류 또는 선별기의 것	8	0	
8437909000	기타	8	0	
8438101000	베이커리 기계	8	0	
8438109000	기타	8	3	
8438200000	과자, 코코아 또는 초콜릿 제조용 기계	8	3	
8438300000	설탕 제조용 기계	8	0	
8438400000	양조용 기계	8	0	
8438501000	육류 조제용 기계	8	3	
8438509000	기타	8	3	
8438600000	과실, 견과 또는 채소 조제용 기계	8	3	
8438801000	어패류 조제용 기계	8	0	
8438809000	기타	8	3	
8438900000	부분품	8	5	
8439101000	쇄목기	8	0	
8439102000	절단기	8	0	
8439103000	스트레이너	8	0	
8439104000	프레스파아트기	8	0	
8439105000	비이터어	8	0	
8439109000	기타	8	0	
8439201000	초지 준비기	8	0	
8439202000	초지기	8	0	
8439209000	기타	8	3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39301000	권취기	8	0	
8439302000	표면 가공기	8	0	
8439303000	지 또는 판지의 침투 가공기	8	0	
8439309000	기타	8	0	
8439910000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8	3	
8439990000	기타	8	3	
8440101000	제본용 재봉기	8	0	
8440102000	제본용 접는 기계	8	0	
8440109000	기타	8	0	
8440901000	제본용 재봉기의 것	8	0	
8440909000	기타	8	5	
8441100000	절단기	8	0	
8441201000	종이백 또는 봉지 제조용 기계	8	0	
8441202000	봉투 제조기	8	0	
8441300000	카톤, 박스, 케이스, 튜브, 드럼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8	0	
8441400000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 제품의 몰딩용 기계	8	0	
8441801000	지 또는 판지의 트리밍기	8	0	
8441809000	기타	8	3	
8441900000	부분품	8	3	
8442301000	활자 주조용 기계류 및 장치	8	0	
8442302000	특수 성형 프레스	8	0	
8442303000	산 부식용 기기	8	0	
8442304000	사진 식자기	8	0	
8442305000	다른 공정에 의한 식자용의 기계류, 장치 및 장비(활자 주조용 장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8442309000	기타	8	0	
8442401000	식자용 기계류 및 장치의 것	8	0	
8442402000	활자주조용 기계류 및 장치의 것	8	0	
8442409000	기타	8	0	
8442500000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그레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8	3	
8443110000	오프셋 인쇄기계류(릴식의 것에 한한다)	8	0	
8443120000	오프셋 인쇄기계류(쉬이트식 사무실용의 것으로 한 변이 22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센티미터 이하인 제본되지 아니한 상태의 쉬이트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8	0	
8443130000	기타 오프셋 인쇄기계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43140000	활판인쇄용 기계(릴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의 것은 제외한다)	8	0	
8443150000	활판인쇄용 기계(릴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의 것은 제외한다)	8	0	
8443160000	곡면인쇄용 기계	8	0	
8443170000	그라비아인쇄용 기계	8	0	
8443191000	직물날염기	8	0	
8443192000	기타의 직물, 가죽, 벽지, 포장지, 리노륨 또는 기타 재료에 동일한 모양, 동일한 문자를 반복하여 인쇄하거나 지색을 인쇄하는 인쇄기	8	0	
8443199000	기타	8	3	
8443311010	레이저 프린터	0	0	
8443311020	도트 프린터	0	0	
8443311030	잉크젯 프린터	0	0	
8443311090	기타	0	0	
8443312000	팩시밀리(프린터 또는 복사기능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한한다)	0	0	
84433130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직접처리식의 것에 한한다)	0	0	
84433130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의 것에 한한다)	8	0	
8443314000	잉크젯방식 인쇄기(소호 제 8443.31.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8	0	
8443321010	레이저 프린터	0	0	
8443321020	도트 프린터	0	0	
8443321030	잉크젯 프린터	0	0	
8443321090	기타	0	0	
8443322000	팩시밀리	0	0	
8443323000	텔레프린터	0	0	
84433240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직접처리식의 것에 한한다)	0	0	
84433240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의 것에 한한다)	8	0	
8443325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8443325090	기타	8	3	
8443391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8443391090	기타	8	0	
84433920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직접처리식의 것에 한한다)	0	0	
84433920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의 것에 한한다)	8	7	
8443393010	광학기구를 갖춘 것	0	0	
8443393020	밀착식의 것	8	0	
8443394000	열식복사기	8	0	
8443399000	기타	8	0	
8443911010	자동급지기	8	0	
8443911020	접기, 풀칠, 천공 및 지철용의 기계	8	0	
8443911030	연속번호기	8	0	
8443911090	기타	8	0	
8443919000	기타	8	0	
8443991000	소호 제 8443.31.10 호 또는 제 8443.32.10 호의 것	0	0	
8443992000	팩시밀리의 것	0	0	
8443993000	텔레프린터의 것	0	0	
8443994010	자동 문서공급기	0	0	
8443994020	지공급기	0	0	
8443994030	분류기	0	0	
8443994090	기타	0	0	
8443995000	소호 제 8443.31.4000 호, 제 8443.32.5010 호, 제 8443.32.5090 호, 제 8443.39.1010 호 또는 제 8443.39.1090 호의 것	8	0	
8443999000	기타	8	3	
8444001000	인조섬유 방사기	5	3	
8444002000	인조섬유 연신기	5	0	
8444003000	인조섬유 텍스처기	5	0	
8444004000	인조섬유 절단기	5	0	
8444009000	기타	5	0	
8445110000	카드기	5	0	
8445120000	코밍기	5	0	
8445130000	연조기 또는 조방기	5	0	
8445191000	혼타면기	5	0	
8445192000	래프성형기	5	0	
8445193000	조면기	8	0	
8445199000	기타	5	0	
8445201010	정방기	5	3	
8445201090	기타	5	0	
8445202010	정방기	5	0	
8445202090	기타	5	0	
8445203000	견방용의 것	5	0	
8445209000	기타	5	0	
8445301000	휠라멘트사용의 것	5	0	
8445302000	방적사용의 것	5	0	
8445309000	기타	5	0	
8445401000	콘 와인더	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45402000	치이즈 와인더	5	0	
8445409000	기타	5	0	
8445901000	정경기	8	0	
8445902000	정경호부기	8	0	
8445903000	통경기	8	0	
8445904000	연경기	8	0	
8445909000	기타	8	0	
8446100000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소폭직기	8	0	
8446211000	면직기	8	0	
8446212000	모직기	8	0	
8446213000	견직기	8	0	
8446219000	기타	8	0	
8446290000	기타	8	0	
8446301010	면직기	8	0	
8446301020	견직기	8	0	
8446301030	타올직기	8	0	
8446301090	기타	8	3	
8446302010	면직기	8	0	
8446302020	견직기	8	0	
8446302030	타올직기	8	0	
8446302090	기타	8	0	
8446303010	면직기	8	0	
8446303020	견직기	8	0	
8446303030	타올직기	8	0	
8446303090	기타	8	0	
8446309010	면직기	8	0	
8446309020	견직기	8	0	
8446309030	타올직기	8	0	
8446309090	기타	8	0	
8447111000	양말편기	8	0	
8447119000	기타	8	0	
8447120000	실린더 지름이 16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8447201010	수편기(반자동 횡편기를 포함한다)	8	0	
8447201020	자동횡편기	8	3	
8447201090	기타	8	0	
8447202010	랏셀기	8	3	
8447202020	트리코트기	8	0	
8447202090	기타	8	0	
8447209000	기타	8	0	
8447901000	레이스기	8	0	
8447902010	자동자수기	8	0	
8447902090	기타	8	0	
8447903000	결망기	8	0	
8447909000	기타	8	0	
8448111000	도비기	8	0	
8448112000	자카드기	8	0	
8448113000	카드 천공기	8	0	
8448119000	기타	8	0	
8448191000	경사용 비임스탠드 또는 크리일	8	0	
8448192000	자동정지기	8	0	
8448193000	경사연접기	8	0	
8448199010	사(絲) 제조용 보조기계(조면기는 제외한다)	5	3	
8448199090	기타	8	0	
8448201000	방사 니플	5	0	
8448209000	기타	5	0	
8448310000	침포	8	0	
8448321000	소면기의 것(가닛와이어는 제외한다)	5	0	
8448329000	기타	8	0	
8448331000	스핀들플라이어	5	0	
8448339010	스핀들	8	0	
8448339020	스피닝링	8	0	
8448339030	링트래블러	8	0	
8448391000	경사비임	8	0	
8448399000	기타	8	0	
8448420000	직조기용의 바디, 종광과 종광 프레임	8	3	
8448491000	셔틀	8	0	
8448499000	기타	8	0	
8448511000	메리야스용 바늘	8	0	
8448512000	자수기용 바늘	8	0	
8448513000	레이스기용 바늘	8	0	
8448519000	기타	8	3	
8448590000	기타	8	3	
8449001010	펠트모자 제조용 기계	8	0	
8449001090	기타	8	0	
8449002000	모자제조용의 형	8	0	
8449009000	부분품	8	3	
8450110000	완전자동 세탁기	8	0	
8450120000	기타 세탁기(원심 탈수기를 내장한 것에 한한다)	8	0	
8450190000	기타	8	3	
8450200000	기계(1 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8	0	
8450900000	부분품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451100000	드라이클리닝기	8	0	
8451210000	1 회의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	8	0	
8451290000	기타	8	0	
8451301000	스티임 프레스	8	0	
8451309000	기타	8	0	
8451401000	세척기	8	0	
8451402000	표백기	8	0	
8451403000	염색기	8	0	
8451501000	권취기, 재권취기	8	0	
8451502000	절단기	8	3	
8451509000	기타	8	3	
8451801000	열처리기	8	0	
8451802000	폭출기	8	0	
8451803000	머서라이징기	8	0	
8451809010	방축가공기	8	0	
8451809020	도포 또는 침투기	8	0	
8451809030	기모기	8	0	
8451809040	패딩기	8	0	
8451809090	기타	8	0	
8451901000	드라이크리닝기의 것	8	0	
8451902000	건조기의 것	8	0	
8451909000	기타	8	0	
8452101010	직진형의 것	8	0	
8452101020	지그재그형의 것	8	0	
8452101030	프리아암식의 것	8	0	
8452101090	기타	8	0	
8452102000	수동식의 것	8	3	
8452211000	신발제조용의 것	8	0	
8452212000	포장대 봉함용의 것	8	0	
8452213000	피혁 또는 기타 후물용의 것	8	0	
8452214000	모피용의 것	8	0	
8452219000	기타	8	0	
8452291000	신발 제조용의 것	8	0	
8452292000	포장대 봉함용의 것	8	0	
8452293000	피혁 또는 기타 후물용의 것	8	0	
8452294000	모피용의 것	8	0	
8452299000	기타	8	0	
8452300000	재봉기용 바늘	8	0	
8452400000	재봉기용의 가구, 밑판 및 덮개와 그 부분품	8	0	
8452900000	재봉기의 기타 부분품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453101000	원피, 모피 또는 피혁의 유피준비기계	8	0	
8453102000	원피, 모피 또는 피혁의 유피기계	8	0	
8453103000	원피, 모피 또는 피혁의 가공기계	8	0	
8453201000	신발제조기계	8	0	
8453202000	신발수선기계	8	0	
8453800000	기타의 기계	8	0	
8453900000	부분품	8	0	
8454100000	전로	8	3	
8454200000	잉곳용의 주형과 레이들	8	0	
8454301010	다이케스팅기	8	3	
8454301090	기타	8	0	
8454309000	기타	8	0	
8454901000	전로의 것	8	0	
8454909000	기타	8	0	
8455100000	관 압연기	8	0	
8455210000	열간 또는 열·냉간 겸용	8	0	
8455220000	냉간 압연기	8	0	
8455301000	주조제의 것	8	3	
8455302000	단조제의 것	8	3	
8455309000	기타	8	0	
8455900000	기타 부분품	8	3	
8456103000	레이저 방식으로 하는 것	8	0	
8456109000	기타	8	7	
8456200000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8	3	
8456301010	와이어 컷 방전 가공기	8	0	
8456301090	기타	8	0	
8456309000	기타	8	0	
8456900000	기타	8	0	
8457101000	수직형	8	7	
8457102000	수평형	8	7	
8457103000	문형	8	5	
8457109000	기타	8	5	
8457200000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의 것에 한한다)	8	0	
8457300000	멀티스테이션용의 트랜스퍼 머신	8	0	
8458110000	수치제어식의 것	8	0	
8458190000	기타	8	0	
8458910000	수치제어식의 것	8	0	
8458990000	기타	8	5	
8459100000	웨이타입 유닛 헤드머신	8	0	
8459210000	수치제어식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59291000	레이디얼 드릴링 머신	8	0	
8459292000	직립 드릴링 머신	8	0	
8459293000	다축 드릴링 머신	8	0	
8459299000	기타	8	3	
8459310000	수치제어식의 것	8	0	
8459390000	기타	8	3	
8459401000	지그 보링머신	8	0	
8459402000	수평 보링머신	8	3	
8459409000	기타	8	0	
8459510000	수치제어식의 것	8	3	
8459590000	기타	8	0	
8459611000	베드형 밀링머신	8	0	
8459612000	평삭 밀링머신	8	0	
8459619000	기타	8	0	
8459691000	베드형 밀링머신	8	0	
8459692000	평삭 밀링머신	8	0	
8459693000	만능공구 밀링머신	8	0	
8459694000	프로필 밀링머신	8	3	
8459699000	기타	8	0	
8459701000	태핑머신	8	0	
8459709000	기타의 나사절삭기	8	0	
8460110000	수치제어식의 것	8	3	
8460190000	기타	8	0	
8460211000	원통연삭기	8	0	
8460212000	내면연삭기	8	0	
8460213000	무심연삭기	8	3	
8460214000	프로파일연삭기	8	3	
8460219000	기타	8	0	
8460291000	원통연삭기	8	0	
8460292000	내면연삭기	8	0	
8460293000	무심연삭기	8	3	
8460294000	프로파일연삭기	8	0	
8460299000	기타	8	3	
8460310000	수치제어식의 것	8	0	
8460390000	기타	8	3	
8460401000	호닝머신	8	7	
8460402000	래핑머신	8	3	
8460900000	기타	8	3	
8461200000	쉐이핑머신 또는 슬로팅머신	8	5	
8461300000	부로칭머신	8	0	
8461401010	수치제어식의 것	8	3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61401090	기타	8	0	
8461402000	기어연삭기 또는 기어완성가공기	8	3	
8461500000	톱기계 또는 절단기	8	0	
8461900000	기타	8	3	
8462101000	에어해머	8	0	
8462109000	기타	8	5	
8462210000	수치제어식의 것	8	3	
8462290000	기타	8	0	
8462310000	수치제어식의 것	8	0	
8462390000	기타	8	0	
8462411000	펀칭기(전단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0	
8462412000	낫칭기	8	0	
8462491000	펀칭기(전단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0	
8462492000	낫칭기	8	0	
8462911000	최고가압이 1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12000	최고가압이 100 메트릭톤 초과 3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13000	최고가압이 300 메트릭톤 초과 1,0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14000	최고가압이 1,000 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8	0	
8462991010	최고가압이 30 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91020	최고가압이 30 메트릭톤 초과 1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91030	최고가압이 100 메트릭톤 초과 3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91040	최고가압이 300 메트릭톤 초과 6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91050	최고가압이 600 메트릭톤 초과 1,5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91090	기타	8	0	
8462999000	기타	8	0	
8463100000	드로우 벤치(봉, 관, 프로파일, 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하는 것에 한한다)	8	0	
8463200000	나사전조기	8	0	
8463300000	선가공기	8	0	
8463900000	기타	8	5	
8464100000	톱기계	8	5	
8464201000	광학용 또는 안경용 유리용의 것	8	0	
8464202000	기타 유리용의 것	8	0	
8464209000	기타	8	0	
8464901000	유리 냉간 가공기계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64902000	콘크리트 가공기계	8	0	
8464903000	도자기 가공기계	8	0	
8464909000	기타	8	0	
8465101000	목재 가공용의 것	8	5	
8465109000	기타	8	0	
8465911000	목재 가공용의 것	8	0	
8465919000	기타	8	0	
8465921000	목재 가공용의 것	8	0	
8465929000	기타	8	0	
8465931000	목재 가공용의 것	8	0	
8465939000	기타	8	0	
8465941000	목재 가공용의 것	8	0	
8465949000	기타	8	0	
8465951000	목재 가공용의 것	8	0	
8465959000	기타	8	0	
8465961000	목재 가공용의 것	8	0	
8465969000	기타	8	0	
8465991000	목재 가공용의 것	8	3	
8465999000	기타	8	3	
8466100000	틀홀더와 자동 개폐식 다이헤드	8	5	
8466201000	항공기용의 것	8	0	
8466209000	기타	8	7	
8466300000	분할대와 기타의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	8	0	
8466910000	제 8464 호의 기계용의 것	8	0	
8466920000	제 8465 호의 기계용의 것	8	5	
8466930000	제 8456 호부터 제 8461 호까지의 기계용의 것	8	3	
8466940000	제 8462 호 또는 제 8463 호의 기계용의 것	8	0	
8467111000	착암기	8	3	
8467112000	스크루 드라이버	8	0	
8467113000	그라인더	8	3	
8467114000	임팩트 렌치	8	0	
8467115000	드릴	8	0	
8467119000	기타	8	3	
8467191000	착암기	8	0	
8467199000	기타	8	3	
8467210000	각종 드릴	8	0	
8467220000	톱	8	0	
8467290000	기타	8	0	
8467810000	체인톱	8	0	
8467891010	소호 제 8430.49 호 또는 제 8479.10 호의 것	0	0	
8467891020	소호 제 8479.89.9010 호, 제 8479.89.9030 호 또는 제 8479.89.9091 호의 것	8	0	
8467891090	기타	8	3	
8467899000	기타	8	3	
8467910000	체인톱의 것	8	0	
8467920000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8	0	
8467990000	기타	8	3	
8468100000	수지식 취관	8	0	
8468201000	가스 용접기	8	5	
8468202000	가스 자동절단기	8	0	
8468209000	기타	8	3	
8468800000	기타의 기기	8	0	
8468900000	부분품	8	7	
8469001010	워드프로세싱 머신	0	0	
8469001020	자동타자기	8	0	
8469002000	기타의 전동식 타자기	8	0	
8469003000	기타의 수동식 타자기	8	0	
8470103010	17 단위 미만인 것	0	0	
8470103020	17 단위 이상인 것	0	0	
8470104010	소호 제 8472.90.9000 호의 것	0	0	
8470104090	기타	0	0	
8470211000	17 단위 미만인 것	0	0	
8470212000	17 단위 이상인 것	0	0	
8470290000	기타	0	0	
8470300000	기타의 계산기	0	0	
8470500000	금전 등록기	0	0	
8470901000	우편요금계기	0	0	
8470902000	표권 발행기	0	0	
8470903000	회계기	0	0	
8470909000	기타	0	0	
847130000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0	0	
8471411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412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419000	기타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7149101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49102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491090	기타	0	0	
8471499000	기타	0	0	
8471501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502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509000	기타	0	0	
8471601010	문자(표식)독취장치	0	0	
8471601020	키 입력장치	0	0	
8471601030	마우스	0	0	
8471601040	스캐너	0	0	
8471601090	기타	0	0	
8471602000	출력장치	0	0	
8471603020	비디오텍스 또는 텔레텍스	0	0	
8471603030	음성 입출력장치	0	0	
8471603090	기타	0	0	
8471701000	주기억장치(램 및 롬)	0	0	
8471702010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0	0	
8471702020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0	0	
8471702031	씨디(CD) 드라이브	0	0	
8471702032	디브이디(DVD) 드라이브	0	0	
8471702033	블루레이 디스크 드라이브	0	0	
8471702039	기타	0	0	
8471702090	기타	0	0	
8471709000	기타	0	0	
8471800000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0	0	
8471900000	기타	0	0	
8472100000	등사기	8	0	
8472301000	편지 분류기	8	0	
8472302000	소인기	8	0	
8472309000	기타	8	3	
8472901010	현금자동지불기	0	0	
8472901020	현금자동입금기	0	0	
8472901040	현금자동지불 및 입금기	0	0	
8472901050	주화계수 또는 포장기	8	0	
8472901090	기타	8	0	
8472902000	등사용 및 인쇄용 자동제판기	8	0	
8472903000	표권발행기	8	0	
8472904000	연필절삭기	8	0	
8472905000	서류절단기	8	0	
8472906000	주소인쇄기와 주소판 엠보싱기	8	0	
8472909000	기타	8	0	
8473101000	워드프로세싱머신용 평판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전기발광), 플라즈마 및 기타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	0	
8473102000	워드프로세싱머신용 인쇄회로조립품(하나 이상의 제 8534 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0	0	
8473109000	기타	8	0	
8473210000	소호 제 8470.10 호, 제 8470.21 호 또는 제 8470.29 호의 전자 계산기의 것	0	0	
8473291000	소호 제 8470.30 호의 기계의 것	0	0	
8473293000	소호 제 8470.50 호의 기계의 것	0	0	
8473294000	소호 제 8470.90 호의 기계의 것	0	0	
8473301000	자기헤드	0	0	
8473302000	주기판(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이 장착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0	0	
8473303000	컴퓨터 케이스	0	0	
8473304010	사운드카드	0	0	
8473304020	비디오 카드	0	0	
8473304030	멀티미디어 카드	0	0	
8473304050	통신접속카드	0	0	
8473304060	디램 모듈	0	0	
8473304090	기타	0	0	
8473309010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로서 제 8542 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	0	0	
8473309090	기타	0	0	
8473401000	현금자동처리기(소호 제 8472.90.1050 호와 제 8472.90.1090 호는 제외한다)용 평판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전기발광), 플라즈마 및 기타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	0	
8473402000	현금자동처리기(소호 제 8472.90.1050 호와 제 8472.90.1090 호는 제외한다)용 인쇄회로조립품(제 8534 호의 하나 이상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0	0	
847340900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73501000	소호 제 8470.10 호, 제 8470.21 호 또는 제 8470.29 호에 해당하는 전자계산기에 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	0	0	
8473509000	기타	0	0	
8474100000	선별기, 기계식 체, 분리기 또는 세척기	0	0	
8474201000	파쇄 또는 분쇄능력이 시간당 20 톤 이하인 것	0	0	
8474209000	기타	0	0	
8474311000	배쳐 플랜트	0	0	
8474319000	기타	0	0	
8474321000	아스팔트 플랜트	0	0	
8474329000	기타	0	0	
8474390000	기타	0	0	
8474801000	주물용 사형의 성형기	0	0	
8474802000	조괴기, 형입기 또는 성형기	0	0	
8474809000	기타	0	0	
8474900000	부분품	0	0	
8475100000	전기 또는 전자램프, 튜브 또는 밸브 또는 플래시벌브(외피가 유리제인 것에 한한다)의 조립기계	8	0	
8475210000	광섬유 및 광섬유예비성형품 제조용 기계	8	0	
8475291000	판유리 제조용의 것	8	0	
8475292000	유리병 제조용의 것	8	0	
8475299000	기타	8	0	
8475901000	판유리 제조용 기계의 것	8	0	
8475909000	기타	8	3	
8476210000	가열장치 또는 냉장장치를 갖춘 것	8	0	
8476290000	기타	8	0	
8476811000	식품 판매용의 것	8	0	
8476819000	기타	8	0	
8476891000	식품 판매용의 것	8	0	
8476893000	담배 판매용의 것	8	0	
8476894000	화폐 교환기	8	0	
8476899000	기타	8	0	
8476900000	부분품	8	0	
8477101000	고무 공업용의 것	8	0	
8477102000	플라스틱 공업용의 것	8	0	
8477201000	고무 공업용의 것	8	0	
8477202000	플라스틱 공업용의 것	8	0	
8477300000	취입 성형기	8	0	
8477400000	진공성형기 및 기타의 열성형기	8	0	
8477510000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나 재생기 또는 기타의 이너튜브 성형기	8	0	
8477590000	기타	8	3	
8477800000	기타의 기계	8	0	
8477900000	부분품	8	3	
8478100000	기계	8	0	
8478900000	부분품	8	5	
8479101000	모올타르 또는 콘크리트 살포기	0	0	
8479102000	기타	0	0	
8479109000	기타	0	0	
8479200000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의 추출 또는 조제용 기계류	8	0	
8479300000	파티클보드 또는 건축용의 섬유판(목재 또는 기타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에 한한다)의 제조용 프레스 및 목재 또는 코르크 처리용의 기타의 기계	8	0	
8479400000	로프 또는 케이블 제조기	8	0	
8479501000	소호 제 8479.81 호, 제 8479.82 호, 제 8479.89.9010 호, 제 8479.89.9030 호, 제 8479.89.9040 호, 제 8479.89.9060 호 또는 제 8479.89.9091 호의 것	8	0	
8479502000	소호 제 8479.89.9080 호의 것	8	0	
8479509000	기타	8	3	
8479600000	증발식 에어쿨러	8	0	
8479811000	금속 세척기	8	3	
8479812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3	0	
8479812090	기타	8	0	
8479813000	권선기	8	0	
8479814000	절연 또는 보호재료 피복기	8	0	
8479819000	기타	8	0	
8479821000	혼합기	8	3	
8479822000	파쇄기와 분쇄기	8	3	
8479823000	균질기	8	0	
8479824000	교반기	8	0	
8479829000	기타	8	5	
8479891010	공기청정기(제습 및 가습 기능이 있는 것에 한한다)	8	0	
8479891090	기타	8	0	
8479899010	프레스 또는 압출기	8	0	
8479899020	선박용 또는 어업용기기	8	0	
8479899030	아일레팅기 또는 튜우볼러 리베팅기	8	0	
8479899040	자동 마그네틱 테이프 제조기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79899050	코팅머신(도포기)	8	0	
8479899060	자동도어 작동기	8	5	
8479899080	조상기	8	0	
8479899091	제 87 류의 차량용의 것	8	3	
8479899092	전자부품장착기	8	7	
8479899099	기타	8	3	
8479901010	냉방기기의 것(카쿨러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8	0	
8479901020	가정형 기기의 것	8	0	
8479901030	제 87 류의 차량용의 것	8	3	
8479902000	소호 제 8479.89.9080 호의 것	8	0	
847990300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8	0	
8479909010	토목공사, 건축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의 것	8	0	
8479909020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의 식물성유지의 추출 또는 조제용 기계류의 것	8	0	
8479909030	로프 또는 케이블 제조기용의 것	8	0	
8479909040	금속처리용 기계류의 것	8	3	
8479909050	혼합기, 반죽기, 파쇄기, 분쇄기, 기계식체, 시프팅기, 균질기, 유화기 또는 교반기의 것	8	3	
8479909060	프레스 또는 압출기의 것	8	5	
8479909070	선박용 또는 어업용 기기의 것	8	0	
8479909080	자동 마그네틱 테이프 제조기의 것	8	0	
8479909090	기타	8	3	
8480100000	금속주조용의 주형틀	8	0	
8480200000	주형 베이스	8	0	
8480300000	주형 제조용의 모형	8	0	
8480410000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8	0	
8480490000	기타	8	0	
8480500000	유리 성형용의 주형	8	0	
8480600000	광물성물질 성형용의 주형	8	0	
8480710000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8	0	
8480790000	기타	8	0	
8481100000	감압밸브	8	0	
8481201000	유압 전송용 밸브	8	0	
8481202000	공기압 전송용 밸브	8	0	
8481300000	체크(논리턴)밸브	8	0	
8481400000	안전밸브	8	0	
8481801010	전기 작동식의 것	8	7	
8481801020	액압 작동식의 것	8	7	
8481801030	기타 자동제어식의 것	8	7	
8481801090	기타	8	3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81802000	탭, 코크와 트랩	8	5	
8481809000	기타	8	7	
8481901000	액튜에이터	8	3	
8481909000	기타	8	3	
8482101000	내경이 10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8482102000	내경이 1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13	7	
8482200000	원추형 롤러베어링(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을 포함한다)	8	3	
8482300000	구형 롤러베어링	8	7	
8482400000	니들 롤러베어링	8	7	
8482500000	기타의 원통형 롤러베어링	8	7	
8482800000	기타(볼베어링과 롤러베어링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5	
8482910000	볼, 니들 및 롤러	8	7	
8482990000	기타	8	7	
848310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83109010	제 87 류 차량용의 것	8	3	
8483109090	기타	8	0	
848320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83209000	기타	8	3	
848330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83309000	기타	8	3	
8483401010	롤러 스크루	3	0	
8483401090	기타	3	0	
8483409010	기어	8	3	
8483409020	기어박스	8	3	
8483409030	무단변속기	8	0	
8483409041	제 87 류 차량용의 것	8	3	
8483409049	기타	8	0	
8483409090	기타	8	3	
8483501000	항공기용의 것	8	0	
8483509000	기타	8	0	
848360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83609000	기타	8	0	
848390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83909000	기타	8	0	
8484101000	제 87 류 차량용의 것	8	0	
8484109000	기타	8	3	
8484200000	메커니컬 실	8	3	
8484900000	기타	8	0	
8486101000	스핀 드라이어(원심분리방식의 것에 한한다)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86209110	반도체 웨이퍼의 식각, 스트리핑 또는 세척을 위한 분사기	0	0	
8486209120	전기도금공정에 앞서 반도체패키지의 금속리드의 세척 및 오염물질제거기	0	0	
8486209190	기타	0	0	
8486209200	포토레지스트를 도포 및 현상 또는 경화시키는 기계	0	0	
8486209310	반도체 웨이퍼가공용 연마기 또는 광택기(래핑기를 포함한다)	0	0	
8486209320	반도체 웨이퍼의 스크라이빙 또는 스코어링을 위한 다이싱기	0	0	
8486209390	기타	8	0	
8486209400	웨이퍼, 캐리어 또는 튜브를 세척하는 기계	0	0	
8486209500	반도체웨이퍼상에 테이프를 부착시키는 기계	0	0	
8486209600	반도체웨이퍼를 칩으로 절단하는 기계	0	0	
8486209900	기타	8	0	
8486301000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기	0	0	
8486302000	감광성 평판디스플레이용 기판에 회로모형을 투영하거나 드로잉하는 기기	0	0	
8486303010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 또는 광자빔 방식에 의한 것	8	0	
8486303020	초음파 방식에 의한 것	8	0	
8486303030	방전 방식에 의한 것	8	0	
8486303041	건식식각기	8	0	
8486303049	기타	8	3	
8486304010	연마기 또는 광택기	8	0	
8486304090	기타	8	0	
8486305010	도포기	8	0	
8486305020	도포 및 현상기	8	0	
8486305031	물리적방식의 것	8	0	
8486305032	화학적방식의 것	8	0	
8486305039	기타	8	0	
8486306010	실, 숏트, 스페이서 또는 액정 디스펜서	8	0	
8486306020	스크라이빙 머신	8	0	
8486306030	패널 어셈블러	8	0	
8486306090	기타	8	0	
8486307000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8	0	
8486308000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 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	8	3	
848630902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로보트	8	3	
848630909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86102000	단결정 보울을 성장시키는 기계	0	0	
8486103010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	0	0	
8486103020	웨이퍼 가공용 연마기 또는 광택기(래핑기를 포함한다)	0	0	
8486103090	기타	8	3	
8486104011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상에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에 의하여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	0	0	
8486104019	기타	8	0	
8486104021	웨이퍼를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기	0	0	
8486104029	기타	8	3	
8486105010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	0	0	
8486105020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노와 오븐	0	0	
8486105030	기타의 노와 오븐	0	0	
8486109000	기타	8	0	
8486201000	스핀 드라이어(원심분리방식의 것에 한한다)	0	0	
8486202100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	0	0	
8486202210	반도체 웨이퍼상의 반도체 소자 제조용의 것	0	0	
8486202290	기타	8	0	
8486202310	반도체 웨이퍼 급속가열기	0	0	
8486202390	기타	0	0	
8486203000	반도체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	0	0	
8486204000	반도체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0	0	
8486205110	반도체 리드의 것	0	0	
8486205190	기타	8	0	
8486205910	반도체 리드의 것	0	0	
8486205990	기타	8	0	
8486206010	반도체웨이퍼상에 직접 그리는 기기	0	0	
8486206020	스텝 앤 리피트 얼라이너	0	0	
8486206090	기타	0	0	
8486207000	반도체 웨이퍼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계	0	0	
8486208110	반도체 제조공정중 레이저빔에 의하여 연결통로를 절단하는 레이저절단기	0	0	
8486208120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상에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에 의하여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	0	0	
8486208190	기타	8	0	
8486208410	반도체재료의 건식식각 패턴용의 것	0	0	
8486208420	반도체웨이퍼를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기	0	0	
848620849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86401010	패턴형성기(사진 감광액이 도포된 감광판으로부터 마스크 또는 레티클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	0	0	
8486401020	마스크와 레티클을 처리 또는 수리하기 위한 포커스드 이온빔 밀링기	0	0	
8486401030	포토레지스트를 도포 및 현상 또는 경화시키는 기계	0	0	
8486401040	마스크와 레티클을 식각, 세척 또는 스트리핑하는 기계와 기기	8	0	
8486401090	기타	8	0	
8486402010	반도체 조립용 다이 부착기, 테이프자동접착기 및 와이어접착기	0	0	
8486402020	반도체 디바이스를 삽입 또는 제거시키는 기계	8	0	
8486402031	반도체조립용 인캡슐레이션 기기	0	0	
8486402039	기타	8	0	
8486402040	납볼을 반도체 제조용 인쇄회로기판 또는 세라믹기판에 탑재하는 기계	3	0	
8486402050	웨이퍼를 세라믹판에 부착 또는 분리하는 기계	8	0	
8486402070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0	0	
8486402080	반도체 다이를 부착하거나 웨이퍼, 캐리어 또는 튜브를 세척하는 기계	0	0	
8486402091	굽힘, 접음, 교정, 펼침용의 금속가공기계(반도체 리드용의 것으로서 프레스를 포함하며, 수치제어식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8486402092	굽힘, 접음, 교정, 펼침용의 금속가공기계(반도체 리드를 제외한 것으로서 프레스를 포함하며, 수치제어식의 여부를 불문한다)	8	3	
8486402093	웨이퍼의 절단 이전에 전체 웨이퍼에 연결접점(범프)을 형성하는 웨이퍼 범핑용 기계	8	3	
8486402094	전기도금공정에 앞서 반도체패키지의 금속리드의 세척 및 오염물질제거기(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 살포 또는 분무용에 한한다)	0	0	
8486402095	저항가열식의 전기식 노와 오븐	0	0	
8486402099	기타	8	0	
8486403010	반도체 소자용 반도체웨이퍼, 웨이퍼카셋트, 상자 및 기타 물품을 이송, 핸들링 그리고 저장하기 위한 자동화된 기계와 기	0	0	
8486403090	기타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86901010	소호 제 8486.10.1000 호, 제 8486.10.2000 호, 제 8486.10.3010 호, 제 8486.10.3020 호, 제 8486.10.4011 호, 제 8486.10.4021 호, 제 8486.10.5010 호, 제 8486.10.5020 호 또는 제 8486.10.5030 호의 것	0	0	
8486901020	소호 제 8486.10.3090 호, 제 8486.10.4019 호, 제 8486.10.4029 호 또는 제 8486.10.9000 호의 것	8	3	
8486902010	소호 제 8486.20.1000 호, 제 8486.20.2100 호, 제 8486.20.2210 호, 제 8486.20.2310 호, 제 8486.20.2390 호, 제 8486.20.3000 호, 제 8486.20.4000 호, 제 8486.20.5110 호, 제 8486.20.5910 호, 제 8486.20.6010 호, 제 8486.20.6020 호, 제 8486.20.6090 호, 제 8486.20.7000 호, 제 8486.20.8110 호, 제 8486.20.8120 호, 제 8486.20.8410 호, 제 8486.20.8420 호, 제 8486.20.9110 호, 제 8486.20.9120 호, 제 8486.20.9190 호, 제 8486.20.9200 호, 제 8486.20.9310 호, 제 8486.20.9320 호, 제 8486.20.9400 호, 제 8486.20.9500 호 또는 제 8486.20.9600 호의 것	0	0	
8486902020	소호 제 8486.20.2290 호, 제 8486.20.5190 호, 제 8486.20.5990 호, 제 8486.20.8190 호, 제 8486.20.8490 호, 제 8486.20.9390 호 또는 제 8486.20.9900 호의 것	8	7	
8486903010	소호 제 8486.30.1000 호 또는 제 8486.30.2000 호의 것	0	0	
8486903020	소호 제 8486.30.3010 호, 제 8486.30.3020 호, 제 8486.30.3030 호, 제 8486.30.3041 호, 제 8486.30.3049 호, 제 8486.30.4010 호, 제 8486.30.4090 호, 제 8486.30.6020 호, 제 8486.30.7000 호, 제 8486.30.8000 호, 제 8486.30.9020 호 또는 제 8486.30.9090 호의 것	8	3	
8486903030	소호 제 8486.30.5010 호, 제 8486.30.5020 호, 제 8486.30.5031 호, 제 8486.30.5032 호, 제 8486.30.5039 호, 제 8486.30.6010 호, 제 8486.30.6030 호 또는 제 8486.30.6090 호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01532000	출력이 375 킬로와트 초과 1,5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8	0	
8501534000	출력이 1,5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	0	
8501611000	출력이 750 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1612000	출력이 750 볼트암페어 초과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1620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1631000	400 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0	0	
8501639000	기타	8	0	
8501640000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0	
8502111000	출력이 750 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112000	출력이 750 볼트암페어 초과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120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131010	400 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0	0	
8502131090	기타	8	0	
8502132000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5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8502134000	출력이 3,5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0	
8502201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202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203010	400 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0	0	
8502203090	기타	8	0	
8502204000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0	
8502311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312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313000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314000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0	
8502391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392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393000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394000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0	
8502400000	전기 회전변환기	8	0	
8503001000	전동기의 것	8	3	
8503002000	발전기의 것과 발전세트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86904010	소호 제 8486.40.1010 호, 제 8486.40.1020 호, 제 8486.40.1030 호, 제 8486.40.2010 호, 제 8486.40.2031 호, 제 8486.40.2070 호, 제 8486.40.2080 호, 제 8486.40.2091 호, 제 8486.40.2094 호, 제 8486.40.2095 호, 제 8486.40.3010 호, 제 8486.40.3090 호, 제 8486.40.4011 호, 제 8486.40.4012 호 또는 제 8486.40.4020 호의 것	0	0	
8486904020	소호 제 8486.40.1040 호, 제 8486.40.1090 호, 제 8486.40.2020 호, 제 8486.40.2039 호, 제 8486.40.2040 호, 제 8486.40.2050 호, 제 8486.40.2061 호, 제 8486.40.2062 호, 제 8486.40.2063 호, 제 8486.40.2092 호, 제 8486.40.2093 호, 제 8486.40.2099 호 또는 제 8486.40.9000 호의 것	8	3	
8487100000	선박 또는 보트의 추진기와 이들의 블레이드	8	0	
8487901000	제 87 류 차량용의 것	8	5	
8487909010	오일 실링	8	3	
8487909090	기타	8	3	
8501101000	직류 전동기	8	0	
8501102000	교류 전동기	8	0	
8501103000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	8	0	
8501201000	출력이 37.5 와트 초과 100 와트 이하인 것	8	0	
8501202000	출력이 100 와트 초과 750 와트 이하인 것	8	0	
8501203000	출력이 750 와트를 초과하는 것	8	0	
8501311010	출력이 100 와트 이하인 것	8	0	
8501311090	기타	8	0	
8501312000	직류발전기	8	0	
8501321000	직류전동기	8	0	
8501322000	직류발전기	8	0	
8501331000	직류전동기	8	0	
8501332000	직류발전기	8	0	
8501341000	직류전동기	8	0	
8501342000	직류발전기	8	0	
8501401000	출력이 100 와트 이하인 것	8	0	
8501402000	출력이 100 와트 초과 750 와트 이하인 것	8	0	
8501403000	출력이 750 와트 초과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8	0	
8501404000	출력이 7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	0	
8501510000	출력이 750 와트 이하인 것	8	0	
8501520000	출력이 750 와트 초과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8	0	
8501531000	출력이 3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8	3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03003000	회전변환기의 것	8	0	
8504101010	전류가 1 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101020	전류가 1 암페어 초과 20 암페어 이하인 것	8	3	
8504102000	전류가 20 암페어 초과 60 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103000	전류가 60 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0	
8504211000	계기용 변압기	8	0	
8504219010	용량이 1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219020	용량이 10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6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221000	계기용 변압기	8	0	
8504229010	용량이 65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229020	용량이 1,00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229030	용량이 5,00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230000	용량이 10,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0	
8504311000	계기용 변압기	8	0	
8504312000	전압 조정기	8	0	
8504319010	용량이 100 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19020	용량이 100 볼트암페어 초과 500 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19040	용량이 500 볼트암페어 초과 1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21000	계기용 변압기	8	0	
8504322000	전압 조정기	8	0	
8504329010	용량이 1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29020	용량이 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6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31000	계기용 변압기	8	0	
8504332000	전압 조정기	8	0	
8504339010	용량이 16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39020	용량이 3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39040	용량이 10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41000	계기용 변압기	8	0	
8504342000	전압 조정기	8	0	
8504349010	용량이 50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2,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49030	용량이 2,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0	
8504401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1090	기타	8	0	
850440201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2019	기타	8	0	
850440209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2099	기타	8	0	
8504403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0	0	
8504403090	기타	8	0	
8504404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0	0	
8504404090	기타	8	0	
8504405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0	0	
8504405090	기타	8	0	
850440901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것	0	0	
8504409019	기타	0	0	
8504409091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9099	기타	8	0	
8504501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0	0	
8504501090	기타	8	0	
8504502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0	0	
8504502090	기타	8	0	
8504509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0	0	
8504509090	기타	8	3	
8504901000	인쇄회로조립품(소호 제 8504.40 호, 제 8504.50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단위기기와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서 제 8534 호의 하나 이상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0	0	
8504909000	기타	8	0	
8505111000	알니코의 것	8	0	
8505119000	기타	8	0	
8505191000	산화철의 것	8	0	
850519900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05200000	전자석 커플링, 클러치와 브레이크	8	0	
8505901000	전자석	8	3	
8505902000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 클램프, 바이스 및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8	0	
8505903000	전자석 리프팅 헤드	8	0	
8505909000	부분품	8	0	
8506101000	망간건전지	13	0	
8506102000	알칼리망간건전지	13	0	
8506109000	기타	8	0	
8506300000	산화수은제의 것	8	0	
8506400000	산화은제의 것	8	0	
8506500000	리튬제의 것	8	0	
8506600000	에어징크제의 것	8	0	
8506801000	산화아연제의 것	8	0	
8506809000	기타	8	0	
8506900000	부분품	8	0	
8507100000	피스톤식 엔진 시동에 사용되는 종류의 연산(鉛酸)	8	0	
8507200000	기타 연산 축전지	8	0	
8507300000	니켈-카드뮴	8	0	
8507400000	니켈-철	8	0	
8507801000	니켈수소 합금	8	0	
8507802000	리튬이온	8	0	
8507803000	리튬폴리머	8	0	
8507809000	기타	8	0	
8507901000	격리판	8	0	
8507909000	기타	8	0	
8508110000	출력이 1,500 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기타 20 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8	0	
8508191000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8	0	
8508199000	기타	8	3	
8508600000	기타 진공청소기	8	3	
8508701000	소호 제 8508.11.0000 호 또는 제 8508.19.1000 호의 것	8	0	
8508702000	소호 제 8508.19.9000 호 또는 제 8508.60.0000 호의 것	8	3	
850940000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 또는 채소즙 추출기	8	0	
8509801000	커피분쇄기	8	0	
8509802000	얼음분쇄기	8	0	
8509803000	바닥광택기	8	0	
8509804000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8	0	
8509809000	기타	8	0	
8509900000	부분품	8	0	
8510100000	면도기	8	0	
8510200000	이발기	8	0	
8510300000	모발제거기	8	0	
8510901000	면도기의 것	8	0	
8510902000	이발기의 것	8	0	
8510903000	모발제거기의 것	8	0	
851110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511109000	기타	8	3	
851120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511209000	기타	8	3	
851130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511309000	기타	8	3	
851140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511409000	기타	8	3	
851150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511509000	기타	8	3	
851180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511809000	기타	8	3	
851190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511909000	기타	8	3	
8512100000	자전거에 사용되는 종류의 조명용 또는 시각신호용 기구	8	0	
8512201000	조명용 기구	8	0	
8512202000	시각신호용 기구	8	0	
8512300000	음향신호용 기구	8	0	
8512400000	윈드스크린와이퍼, 제상기와 제무기	8	0	
8512900000	부분품	8	0	
8513101000	광산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안전등	8	0	
8513102000	손전등	8	0	
8513109000	기타	8	0	
8513900000	부분품	8	0	
8514101000	이화학용의 것	8	0	
8514102000	금속공업용의 것	8	0	
8514103000	식품공업용의 것	8	0	
8514109000	기타	8	0	
8514201000	이화학용의 것	8	0	
8514202000	금속공업용의 것	8	0	
8514203000	식품공업용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514209000	기타	8	0	
8514300000	기타의 노와 오븐	8	0	
85144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8514409000	기타	8	0	
85149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8514909000	기타	8	0	
8515110000	납땜용의 인두와 건	8	5	
8515190000	기타	8	3	
8515211010	로보트형의 것	8	0	
8515211090	기타	8	0	
8515212010	로보트형의 것	8	0	
8515212090	기타	8	3	
8515213010	로보트형의 것	8	0	
8515213090	기타	8	0	
8515219010	로보트형의 것	8	0	
8515219090	기타	8	0	
8515291000	점 용접기기	8	0	
8515292000	봉합 용접기기	8	0	
8515293000	바트 용접기기	8	0	
8515299000	기타	8	0	
8515311010	로보트형의 것	8	0	
8515311090	기타	8	0	
8515319010	로보트형의 것	8	0	
8515319090	기타	8	3	
8515391000	교류아크 용접기기	8	0	
8515399000	기타	8	3	
8515801000	초음파 응용기기	8	3	
8515802000	전자빔용기기	8	0	
8515803000	레이저 작동식기기	8	7	
8515809000	기타	8	3	
8515901000	용접기의 것	8	3	
8515909000	기타	8	3	
8516100000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가열기	8	0	
8516210000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8	0	
8516290000	기타	8	0	
8516310000	헤어드라이어	8	0	
8516320000	기타 이용기기	8	0	
8516330000	손 건조기	8	0	
8516400000	전기다리미	8	0	
851650000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516601000	전기오븐	8	0	
8516602000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8	0	
8516609000	기타	8	0	
8516710000	커피 또는 차 끓이는 기기	8	0	
8516720000	토스터	8	0	
8516791000	전기보온밥통	8	0	
8516799000	기타	8	0	
8516800000	전열용 저항체	8	3	
8516900000	부분품	8	0	
8517110000	유선전화기(코드리스 핸드세트가 있는 것에 한한다)	0	0	
8517121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8517121090	기타	0	0	
8517122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8517122090	기타	0	0	
8517123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8517123090	기타	0	0	
8517124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8517124090	기타	0	0	
8517129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8517129090	기타	0	0	
8517181000	푸쉬 버튼식 전화기	0	0	
8517189000	기타	0	0	
8517611000	기지국용 송수신기	0	0	
8517619000	기타	0	0	
8517621000	텔레프린터	0	0	
8517622010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	0	0	
8517622020	사설통신용 교환기	0	0	
8517622090	기타	0	0	
8517623110	단국장치	0	0	
8517623120	중계장치	0	0	
8517623190	기타	0	0	
8517623210	단국장치	0	0	
8517623220	중계장치	0	0	
8517623290	기타	0	0	
8517623310	광중계장치	0	0	
8517623320	광단국장치	0	0	
8517623390	기타	0	0	
8517623410	에이/디, 디/에이변환기	0	0	
8517623420	코덱(코더와 디코더)	0	0	
8517623430	모뎀(모뎀카드를 포함한다)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17703050	무선전화용, 무선전신용 송신기기의 것	0	0	
8517703060	무선전화용, 무선전신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소호 제 8517.70.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8517703070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0	0	
8517703090	기타	0	0	
8517704011	호출, 경보 또는 페이징용의 휴대용 수신기기의 것	0	0	
8517704019	기타	8	0	
8517704020	영상전화기의 것	0	0	
8517704090	기타	8	0	
8518101000	전기통신용 마이크로폰(지름이 10 밀리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3 밀리미터 이하이며, 주파수 대역이 300 헤르츠부터 3.4 킬로헤르츠까지인 것에 한한다)	0	0	
8518109000	기타	8	3	
8518210000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에 한한다)	8	5	
8518220000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에 한한다)	8	5	
8518291000	전기통신용의 것(지름이 50 밀리미터 이하이고, 주파수대역이 300 헤르츠부터 3.4 킬로헤르츠까지이며, 하우징이 없는 것에 한한다)	0	0	
8518299000	기타	8	0	
8518304000	유선전화 핸드세트	0	0	
8518309000	기타	8	0	
8518400000	가청주파증폭기	8	0	
8518500000	음향증폭세트	8	0	
8518901000	인쇄회로조립품(소호 제 8518.10.1000 호, 제 8518.29.1000 호의 것에 한한다)	0	0	
8518909000	기타	8	0	
8519201000	코인 또는 디스크 작동식 레코드 플레이어(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	0	
8519209000	기타(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	0	
8519301000	레코드판 자동교환 기능을 갖춘 것	8	0	
8519309000	기타	8	5	
8519500000	전화응답기	0	0	
8519811000	트랜스크라이빙 머신(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	0	
8519812100	카세트 플레이어(제 85 류 소호주 제 1 호에서 규정한 것에 한한다)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17623490	기타	0	0	
8517623510	아날로그 신호전송 방식인 것	0	0	
8517623520	디지털 신호전송 방식인 것	0	0	
8517623590	기타	0	0	
8517623900	기타	0	0	
8517624010	키-폰	0	0	
8517624020	영상전신기기	0	0	
8517624090	기타	0	0	
8517625000	무선전화용, 무선전신용 송신기기	0	0	
8517626010	인쇄전신기기	0	0	
8517626020	영상전신기기	0	0	
8517626031	워키토키 세트	0	0	
8517626039	기타	0	0	
8517626040	모사전송기기	0	0	
8517626050	무선통신용교환기	0	0	
8517626060	무선통신용중계기	0	0	
8517626090	기타	0	0	
8517627000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0	0	
8517629000	기타	0	0	
8517691100	장중단파 수신기	8	0	
8517691211	호출, 경보 또는 페이징용 휴대용 수신기기	0	0	
8517691219	기타	8	0	
8517691290	기타	8	0	
8517691900	기타	8	0	
8517692000	영상전화기	0	0	
8517699000	기타	0	0	
8517701010	유선전화기의 것	0	0	
8517701021	키패드	0	0	
8517701022	케이스	0	0	
8517701029	기타	0	0	
8517701090	기타	0	0	
8517702000	소호 제 8517.61 호의 것	0	0	
8517703010	텔레프린터의 것	0	0	
8517703021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의 것	0	0	
8517703022	사설통신용 교환기의 것	0	0	
8517703029	기타	0	0	
8517703031	동축케이블 반송장치의 것	0	0	
8517703032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것	0	0	
8517703039	기타	0	0	
8517703041	영상전신기기의 것	0	0	
8517703049	기타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19812210	자동차용의 것	8	0	
8519812220	휴대용의 것(제 85 류 소호주 제 1 호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8	5	
8519812290	기타	8	0	
8519812310	자동차용의 것	8	0	
8519812320	휴대용의 것	8	0	
8519812390	기타	8	0	
8519812900	기타	8	0	
8519813000	딕테이팅기(외부전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	8	0	
8519814111	자동차용의 것	8	0	
8519814112	휴대용의 것	8	5	
8519814119	기타	8	0	
8519814190	기타	8	0	
8519814210	자동차용의 것	8	0	
8519814220	휴대용의 것	8	0	
8519814290	기타	8	0	
8519814310	릴형의 것	8	0	
8519814390	기타	8	0	
8519815010	릴형의 것	8	0	
8519815020	디스크형의 것	8	0	
8519815030	카세트형	8	0	
8519815090	기타	8	0	
8519819000	기타 음성기록기(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8519891010	확성기를 갖추지 아니한 것	8	0	
8519891090	기타	8	0	
8519892000	트랜스크라이빙 머신(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	0	
8519893000	데크(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8519899010	기타 음성재생기(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	0	
8519899020	기타 음성기록기(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8521101000	폭이 12.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8521102000	폭이 12.7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8521901000	디스크형의 것	8	0	
8521909000	기타	8	0	
8522100000	픽업 카트리지	8	0	
8522901010	오디오 녹음용	8	0	
8522901020	비디오 녹화용	8	0	
8522901090	기타	8	0	
8522902000	레이저 픽업	8	0	
8522909010	전화응답기용 평판 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전기발광), 플라즈마 및 기타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	0	
8522909020	전화응답기용 인쇄회로조립품(제 8534 호의 하나 이상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0	0	
8522909090	기타	8	0	
8523210000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자장한 카드(기록여부를 불문한다)	8	0	
8523291110	폭이 4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8523291120	폭이 4 밀리미터 초과 6.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8523291130	폭이 6.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8523291210	플로피 디스크	0	0	
8523291290	기타	0	0	
8523291900	기타	0	0	
85232921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292119	기타	0	0	
852329212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292129	기타	0	0	
852329213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292139	기타	0	0	
8523292211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292219	기타	8	0	
8523292221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292229	기타	8	0	
8523292231	비디오 녹화된 것	13 퍼센트 또는 34 원/분 (표준속도)	0	
8523292239	기타	8	5	
85232929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292919	기타	0	0	
8523292991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292992	명령, 데이터, 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거나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0	0	
8523292999	기타	8	0	
8523401000	기록이 안된 매체	0	0	
85234021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23402119	기타	0	0	
8523402120	음성만을 재생하는 것	8	3	
8523402131	명령, 데이터, 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거나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0	0	
8523402139	기타	8	0	
85234029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402919	기타	0	0	
8523402991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402992	명령, 데이터, 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거나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0	0	
8523402999	기타	8	0	
8523511000	기록이 안된 매체	0	0	
85235121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512190	기타	0	0	
8523512910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512920	명령, 데이터, 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거나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0	0	
8523512990	기타	8	0	
8523521000	카드로서 한 개의 전자집적회로를 자장한 것 및 그 부분품	0	0	
8523529000	기타 및 그 부분품	8	0	
8523591000	기록이 안된 매체	0	0	
85235921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592190	기타	0	0	
8523592910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592920	명령, 데이터, 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거나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0	0	
8523592990	기타	8	0	
8523593000	프록시미티 카드 및 태그	0	0	
8523801000	기록이 안된 매체	0	0	
8523802100	축음기용의 레코드판	8	0	
85238022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802290	기타	0	0	
8523802910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802920	명령, 데이터, 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거나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0	0	
8523802990	기타	8	0	
8525501000	라디오방송용의 것	8	3	
8525502000	텔레비전용의 것	8	0	
8525509000	기타	8	3	
8525601000	라디오방송용의 것	0	0	
8525602000	텔레비전용의 것	0	0	
8525609000	기타	0	0	
8525801010	녹화기용의 것	8	0	
8525801020	모니터용의 것	8	0	
8525801090	기타	8	0	
8525802010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	0	0	
8525802090	기타	0	0	
8525803000	비디오카메라레코더	0	0	
8526101000	항공기용의 것	8	0	
8526109000	기타	8	0	
8526911010	항공기용의 것	8	0	
8526911090	기타	8	0	
8526912010	항공기용의 것	8	0	
8526912090	기타	8	0	
8526913010	항공기용의 것	8	0	
8526913020	자동차용의 것	8	0	
8526913090	기타	8	0	
8526914000	로오랑 리이시버	8	0	
8526919010	항공기용의 것	8	0	
8526919020	자동차용의 것	8	0	
8526919090	기타	8	3	
8526920000	무선원격조절기기	8	3	
8527120000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8	0	
8527131000	카세트형의 것	8	0	
8527132000	디스크형의 것	8	0	
8527133000	카셋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8	0	
8527139000	기타	8	0	
8527190000	기타	8	5	
8527211000	카세트형의 것	8	0	
8527212000	디스크형의 것	8	0	
8527213000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8	0	
852721900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27290000	기타	8	0	
8527911010	카세트형의 것	8	0	
8527911020	디스크형의 것	8	0	
8527911030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8	0	
8527911090	기타	8	0	
8527919000	기타	8	0	
8527920000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8	0	
8527990000	기타	8	3	
8528410000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0	
8528491010	텔레비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한한다)	8	0	
8528491090	기타	8	0	
8528492010	텔레비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한한다)	8	0	
8528492090	기타	8	0	
8528511000	액정모니터	0	0	
8528519000	기타	0	0	
8528591010	텔레비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한한다)	8	0	
8528591090	기타	8	0	
8528592010	텔레비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한한다)	8	0	
8528592090	기타	8	0	
8528610000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0	
8528690000	기타	8	0	
8528711010	천연색의 것	8	0	
8528711020	흑백 또는 기타 단색의 것	8	0	
8528712010	수직해상도 720 선 이상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것	8	0	
8528712090	기타	8	0	
8528719010	천연색의 것	8	0	
8528719020	흑백 또는 기타 단색의 것	8	0	
8528721010	아날로그의 것	8	0	
8528721020	디지털의 것	8	0	
8528722010	아날로그의 것	8	0	
8528722020	디지털의 것	8	0	
8528723010	아날로그의 것	8	0	
8528723020	디지털의 것	8	0	
8528724010	아날로그의 것	8	0	
8528724020	디지털의 것	8	0	
8528729000	기타	8	0	
8528731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37 센티미터 미만인 것	8	0	
8528732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37 센티미터 이상 45.72 센티미터 미만인 것	8	0	
8528733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45.72 센티미터 이상인 것	8	0	
8528739000	기타	8	0	
8529101000	레이더기기용의 것	8	5	
8529109100	항행용 무선기기 또는 무선원격조절기용의 것	8	0	
8529109210	위성방송 수신용의 것	8	0	
8529109290	기타	8	0	
8529109300	무선전화용 및 무선전신용 기기와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0	
8529109900	기타	8	5	
8529901000	레이더기기의 것	8	0	
8529909100	항행용 무선기기 또는 무선원격조절기의 것	8	0	
8529909200	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의 것	8	0	
8529909400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의 것	8	0	
8529909500	텔레비전 카메라의 것	8	0	
8529909610	천연색튜너	8	3	
8529909620	흑백 또는 단색튜너	8	0	
8529909630	영상투사기용 스크린	8	5	
8529909641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방식용의 것	8	0	
8529909649	기타	8	0	
8529909650	기타 흑백 또는 단색용의 것	8	0	
8529909910	수신기기가 결합된 송신기기의 것 또는 디지털카메라의 것(디지털정지화상 비디오카메라의 것을 포함한다)	0	0	
8529909920	소호 제 8528.51 호, 제 8528.41.0000 호 또는 제 8528.61.0000 호의 것	0	0	
8529909990	기타	8	0	
8530101010	지상장치용의 것	8	0	
8530101090	기타	8	0	
8530109000	기타	8	0	
8530800000	기타 기기	8	0	
8530900000	부분품	8	0	
8531101000	도난경보기	8	3	
8531102000	화재경보기	8	0	
8531103000	가스경보기	8	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31104000	전기식의 벨	8	0	
8531105000	사이렌	8	0	
8531109000	기타 음향 또는 신호기기	8	0	
8531201010	셀룰러 통신망을 이용한 휴대전화용의 것	0	0	
8531201090	기타	0	0	
8531202000	발광다이오드단자(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0	0	
8531801010	셀룰러 통신망을 이용한 휴대전화용의 것	8	0	
8531801090	기타	8	0	
8531809000	기타	8	0	
8531901000	소호 제 8531.10 호의 것	8	5	
8531902000	소호 제 8531.20 호의 것	0	0	
8531909000	기타	8	0	
8532100000	고정식 축전기로 50/60 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무효전력 용량이 0.5 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0	0	
8532210000	탄탈룸	0	0	
8532220000	알루미늄 전해	0	0	
8532230000	세라믹 유전체(단층)	0	0	
8532240000	세라믹 유전체(다층)	0	0	
8532250000	종이 또는 플라스틱 유전체	0	0	
8532290000	기타	0	0	
8532301000	폴리에틸렌 가변식 축전기	0	0	
8532309000	기타	0	0	
8532901000	축전기로서 고정식의 것	0	0	
8532902000	축전기로서 가변식의 것	0	0	
8532909000	기타	0	0	
8533100000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콤퍼지션형 또는 필름형의 것에 한한다)	0	0	
8533211000	칩형의 것	0	0	
8533219000	기타	0	0	
8533291000	칩형의 것	0	0	
8533299000	기타	0	0	
8533310000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0	0	
8533390000	기타	0	0	
8533401000	탄소가변의 것	0	0	
8533402000	써머스터	0	0	
8533403000	바리스터	0	0	
8533409000	기타	0	0	
8533901000	가변식 저항기의 것	0	0	
8533909000	기타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34001000	수동소자 부분(인덕턴스, 저항기 및 축전기)이 형성된 것	0	0	
8534002000	테이프형 또는 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회로가 형성된 것	0	0	
8534009000	기타	0	0	
8535100000	퓨즈	8	0	
8535211000	정격전압이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8	0	
8535212000	정격전압이 7.25 킬로볼트 이상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8	0	
8535291000	정격전압이 200 킬로볼트 미만인 것	8	0	
8535292000	정격전압이 200 킬로볼트 이상인 것	8	0	
8535301000	정격전압이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8	0	
8535302000	정격전압이 7.25 킬로볼트 이상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8	0	
8535303000	정격전압이 72.5 킬로볼트 이상 200 킬로볼트 미만인 것	8	0	
8535304000	정격전압이 200 킬로볼트 이상인 것	8	0	
8535400000	피뢰기, 전압제한기와 서지억제기	8	0	
8535901000	커넥터	8	0	
8535902000	전기 터미널	8	0	
8535909000	기타	8	0	
8536101000	관형의 것	8	0	
8536109000	기타	8	0	
8536200000	자동회로차단기	8	0	
8536300000	전기회로보호용 기타 기기	8	0	
8536410000	전압이 60 볼트 이하인 것	8	0	
8536490000	기타	8	0	
8536501000	회전형의 것	8	0	
8536502000	푸쉬 버튼형의 것	8	0	
8536503000	마이크로형의 것	8	0	
8536504000	전자개폐형의 것(전자접속기를 포함한다)	8	0	
8536509010	전기기계식의 스냅동작방식의 것(전류가 11 암페어 이하인 것에 한한다)	0	0	
8536509020	교류(AC)방식의 것(입출력 회로가 광학적으로 짝지워진 것에 한한다)	0	0	
8536509030	온도보호용의 것(1,000 볼트 이하의 전압용으로 트랜지스터와 논리칩으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0	0	
8536509090	기타	8	0	
8536610000	램프홀더	8	0	
8536691000	동축케이블 및 인쇄회로용의 것	0	0	
8536699000	기타	8	5	
8536701000	플라스틱제의 것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39909000	기타	8	0	
8540110000	천연색의 것	8	0	
8540120000	흑백 또는 기타 단색의 것	8	0	
8540201000	텔레비전용 촬상관	8	0	
8540209000	기타	8	0	
854040000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천연색인 것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 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8	0	
854050000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흑백 또는 기타 단색의 것에 한한다)	8	0	
8540601000	천연색의 것	8	0	
8540609000	기타	8	0	
8540710000	자전관	8	0	
8540720000	속도변조관	8	0	
8540790000	기타	8	0	
8540810000	수신관 또는 증폭관	8	0	
8540891000	송신기용의 열전자관	8	0	
8540892000	방전관	8	0	
8540893000	디지트론	8	0	
8540899000	기타	8	0	
8540911000	디플렉션 코일	8	0	
8540912000	전자총	8	0	
8540913000	새도우마스크	8	0	
8540919000	기타	8	0	
8540990000	기타	8	0	
8541101000	칩, 다이스와 칩으로 절단되지 아니한 웨이퍼	0	0	
8541109000	기타	0	0	
8541211000	칩, 다이스와 칩으로 절단되지 아니한 웨이퍼	0	0	
8541219000	기타	0	0	
8541291000	칩, 다이스와 칩으로 절단되지 아니한 웨이퍼	0	0	
8541299000	기타	0	0	
8541301000	칩, 다이스와 칩으로 절단되지 아니한 웨이퍼	0	0	
8541302000	사이리스터	0	0	
8541303000	다이액	0	0	
8541304000	트라이액	0	0	
8541401000	칩, 다이스와 칩으로 절단되지 아니한 웨이퍼	0	0	
8541402010	레이저소자	0	0	
8541402090	기타	0	0	
8541409010	광전도 셀	0	0	
8541409020	광전지(태양전지, 포토다이오드, 포토커플 및 포토릴레이를 포함한다)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36702000	이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의 것	8	0	
8536703010	주조, 주형, 압착 또는 단조된 것(이들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8536703090	기타	8	0	
8536901000	접속함	0	0	
8536909010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	0	0	
8536909090	기타	8	0	
8537101000	배전반	8	0	
8537102000	자동제어반	8	0	
8537109000	기타	8	0	
8537201000	배전반	8	0	
8537202000	자동제어반	8	0	
8537209000	기타	8	0	
8538100000	보드, 패널, 콘솔, 책상, 캐비닛 및 기타 기반(제 8537 호의 물품용에 한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8	0	
8538901000	개폐기의 것	8	0	
8538902000	자동차단기의 것	8	0	
8538903000	계전기의 것	8	0	
8538904000	자동제어반의 것	8	5	
8538909000	기타	8	0	
8539100000	실드빔 램프유닛	8	0	
8539210000	텅스텐 할로겐의 것	8	0	
8539221000	백열램프	8	0	
8539222000	장식용 램프	8	0	
8539223000	빔 램프	8	0	
8539224000	집어용 램프	8	0	
8539229000	기타	8	0	
8539290000	기타	8	0	
8539310000	형광램프(열 음극형의 것에 한한다)	8	0	
8539321000	수은램프	8	0	
8539322000	나트륨 증기 램프	8	0	
8539323000	메탈할라이드램프	8	0	
8539391000	냉음극 형광램프	8	0	
8539399000	기타	8	0	
8539410000	아크 램프	8	0	
8539491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3	0	
8539491090	기타	8	0	
8539492000	적외선 램프	8	0	
853990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8	0	
8539902000	방전램프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41409030	전하결합소자	0	0	
8541409090	기타	0	0	
8541501000	칩, 다이스와 칩으로 절단되지 아니한 웨이퍼	0	0	
8541502000	정류소자	0	0	
8541509000	기타	0	0	
8541601000	수정진동자	0	0	
8541609000	기타	0	0	
8541901000	리드프레임	0	0	
8541902000	다이오드의 것	0	0	
8541903000	트랜지스터의 것	0	0	
8541909000	기타	0	0	
8542311000	모노리식 집적회로	0	0	
854231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0	
854231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0	
8542321010	디램	0	0	
8542321020	에스램	0	0	
8542321030	플래시 메모리	0	0	
8542321090	기타	0	0	
854232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0	
854232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0	
8542331000	모노리식 집적회로	0	0	
854233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0	
854233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0	
8542391000	모노리식 집적회로	0	0	
854239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0	
854239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0	
8542901010	리드프레임	0	0	
8542901090	기타	0	0	
8542902010	리드프레임	0	0	
8542902090	기타	0	0	
8542903010	리드프레임	0	0	
8542903090	기타	0	0	
8543100000	입자가속기	8	0	
8543200000	신호발생기	8	0	
8543300000	전기도금, 전기분해 또는 전기영동(泳動)용 기기	8	0	
8543701000	일렉트릭 펜스 에너자이저	8	0	
8543702010	이온정수기	8	0	
8543702020	전기식 미용기기	8	0	
8543702030	오디오믹서	8	0	
8543702040	이퀄라이저	8	0	
8543702050	오존 발생기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43702090	기타	8	0	
8543703000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	0	0	
8543709010	고주파증폭기	8	0	
8543709020	디텍터(광센서를 포함한다)	8	0	
8543709030	전기신경자극기	0	0	
8543709090	기타	8	3	
8543901000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0	0	
8543909011	유기발광다이오드	0	0	
8543909019	기타	0	0	
8543909020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인쇄회로조립품(제 8534 호의 하나 이상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0	0	
8543909090	기타	8	5	
8544111000	절연도료 피복전선	8	0	
8544119000	기타	8	0	
8544190000	기타	8	0	
8544200000	동축케이블과 기타 동축 도체	8	0	
854430000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기타 와이어링 세트(자동차, 항공기 또는 선박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	8	0	
8544421010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0	
8544421090	기타	8	0	
8544422010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0	
8544422090	기타	8	0	
8544429010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0	
8544429090	기타	8	0	
8544491011	전압이 80 볼트 이하인 것	0	0	
8544491012	전압이 80 볼트 초과 1,000 볼트 이하인 것	8	0	
8544491090	기타	8	0	
8544492011	전압이 80 볼트 이하인 것	0	0	
8544492012	전압이 80 볼트 초과 1,000 볼트 이하인 것	8	0	
8544492090	기타	8	0	
8544499011	전압이 80 볼트 이하인 것	0	0	
8544499012	전압이 80 볼트 초과 1,000 볼트 이하인 것	8	0	
8544499090	기타	8	0	
8544601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8	0	
8544601090	기타	8	0	
8544602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8	0	
8544602090	기타	8	0	
8544603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8	0	
854460309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603102000	화차	5	0	
8603901000	객차	5	0	
8603902000	화차	5	0	
8604001000	공작차	5	0	
8604002000	기중기차	5	0	
8604003000	검사차	5	0	
8604004000	궤도검사차	5	0	
8604009000	기타	5	0	
8605001010	침대차	5	0	
8605001090	기타	5	0	
8605002000	수하물차	5	0	
8605003000	우편차	5	0	
8605004000	병원차	5	0	
8605009000	기타	5	0	
8606100000	탱크차 및 이와 유사한 차	0	0	
8606300000	자기양하식의 화차(소호 제 8606.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8606911000	단열 또는 냉동용의 화차(소호 제 8606.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8606919000	기타	0	0	
8606920000	무개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8606990000	기타	0	0	
8607110000	구동식의 보우기와 비셀보우기	5	0	
8607120000	기타의 보우기와 비셀보우기	5	0	
8607191000	차축	5	0	
8607192000	차륜	5	0	
8607193000	윤축	5	0	
8607199000	기타	5	3	
8607210000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5	3	
8607290000	기타	5	3	
8607301000	혹	5	0	
8607302000	연결장치	5	3	
8607303000	완충장치	5	3	
8607309000	기타	5	3	
8607910000	기관차용의 것	5	0	
8607990000	기타	5	3	
8608001000	철도 또는 궤도선로용 장치물	8	0	
8608002000	기계식의 신호, 안전 또는 교통 관제용의 기기	8	0	
8608009000	부분품	8	0	
8609001000	액체 운반용의 것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44700000	광섬유 케이블	0	0	
8545110000	노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0	
8545190000	기타	5	0	
8545200000	브러시	8	3	
8545901000	탄소봉	8	0	
8545909000	기타	8	0	
8546101000	정격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	8	0	
8546102000	정격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	8	0	
8546201000	정격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	8	0	
8546202000	정격전압이 1,000 볼트 초과 10 킬로볼트 이하인 것	8	0	
8546203000	정격전압이 10 킬로볼트 초과 100 킬로볼트 이하인 것	8	0	
8546204000	정격전압이 100 킬로볼트 초과 300 킬로볼트 이하인 것	8	0	
8546205000	정격전압이 300 킬로볼트를 초과하는 것	8	0	
8546901000	플라스틱제의 애자	8	0	
8546909000	기타	8	0	
8547100000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8	0	
8547200000	플라스틱제의 절연용 물품	8	0	
8547900000	기타	8	0	
8548101000	소호 제 3824.90 호의 것	6.5	0	
8548102000	소호 제 7204.21 호, 제 7204.29 호, 제 7204.30 호 또는 제 7204.49 호의 것	0	0	
8548103000	소호 제 7404.00 호의 것	0	0	
8548104010	소호 제 7503.00 호의 것	0	0	
8548104020	소호 제 7902.00 호의 것	0	0	
8548105000	소호 제 7802.00 호의 것	0	0	
8548106010	소호 제 8107.30 호의 것	3	0	
8548106020	소호 제 8111.00 호의 것	3	0	
8548107000	소호 제 8506.10 호, 제 8506.30 호, 제 8506.40 호, 제 8506.50 호, 제 8506.60 호 또는 제 8506.80 호의 것	8	0	
8548109000	기타	8	0	
8548901000	전자 초소형 조립회로	0	0	
8548909000	기타	8	0	
8601100000	외부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5	0	
8601200000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5	0	
8602100000	디젤 전기기관차	0	0	
8602900000	기타	0	0	
8603101000	객차	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703317000	신차	8	0	
8703318000	중고차	8	0	
8703321010	신차	8	0	
8703321020	중고차	8	0	
8703329010	신차	8	0	
8703329020	중고차	8	0	
8703337000	신차	8	0	
8703338000	중고차	8	0	
8703907000	전기자동차	8	0	
8703909000	기타	8	0	
870410000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0	0	
8704211010	신차	10	0	
8704211020	중고차	10	0	
8704219010	냉동 및 냉장차	10	0	
8704219020	탱크차	10	0	
8704219090	기타	10	0	
8704221011	신차	10	0	
8704221012	중고차	10	0	
8704221091	신차	10	0	
8704221092	중고차	10	0	
8704229010	냉동 및 냉장차	10	0	
8704229020	탱크차	10	0	
8704229090	기타	10	0	
8704231010	신차	10	0	
8704231020	중고차	10	0	
8704239010	냉동 및 냉장차	10	0	
8704239020	탱크차	10	0	
8704239090	기타	10	0	
8704311010	신차	10	0	
8704311020	중고차	10	0	
8704319010	냉동 및 냉장차	10	0	
8704319020	탱크차	10	0	
8704319090	기타	10	0	
8704321010	신차	10	0	
8704321020	중고차	10	0	
8704329010	냉동 및 냉장차	10	0	
8704329020	탱크차	10	0	
8704329090	기타	10	0	
8704901010	신차	10	0	
8704901020	중고차	1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609002000	압축가스 운반용의 것	0	0	
8609003000	일반화물 운반용의 것	0	0	
8609004000	동물 운반용의 것	0	0	
8609005000	냉동 및 냉장용의 것	0	0	
8609009000	기타	0	0	
8701100000	보행운전형 트랙터	8	0	
8701201000	신차	8	0	
8701202000	중고차	8	0	
8701300000	무한궤도식 트랙터	0	0	
8701901010	신차	8	0	
8701901020	중고차	8	0	
8701909110	50 마력 미만인 것	0	0	
8701909190	기타	0	0	
8701909900	기타	8	0	
8702101010	신차	10	0	
8702101020	중고차	10	0	
8702102010	신차	10	0	
8702102020	중고차	10	0	
8702103010	신차	10	0	
8702103020	중고차	10	0	
8702901010	신차	10	0	
8702901020	중고차	10	0	
8702902010	신차	10	0	
8702902020	중고차	10	0	
8702903010	신차	10	0	
8702903020	중고차	10	0	
8703101000	설상주행용의 것	8	0	
8703102000	골프용차	8	0	
8703109000	기타	8	0	
8703217000	신차	8	0	
8703218000	중고차	8	0	
8703227000	신차	8	0	
8703228000	중고차	8	0	
8703231010	신차	8	0	
8703231020	중고차	8	0	
8703239010	신차	8	0	
8703239020	중고차	8	0	
8703241010	신차	8	0	
8703241020	중고차	8	0	
8703249010	신차	8	0	
8703249020	중고차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704909010	냉동 및 냉장차	10	0	
8704909020	탱크차	10	0	
8704909090	기타	10	0	
8705101000	신축붐식의 것	8	0	
8705102000	앵글식의 것	8	0	
8705109000	기타	8	0	
8705200000	이동식 시추용의 데릭차	8	0	
8705300000	소방차	8	0	
870540000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8	0	
8705901010	농업용 살포차	8	0	
8705901090	기타	8	0	
8705909010	구난차	8	0	
8705909020	도로청소차	8	0	
8705909030	이동공작차	8	0	
8705909040	이동방송차	8	0	
8705909050	이동진료차	8	0	
8705909060	이동통신차와 레이더차	8	0	
8705909070	제설차	8	0	
8705909090	기타	8	0	
8706001010	소호 제 8701.20 호 또는 제 8701.90.10 호의 것	8	0	
8706001090	기타	8	0	
8706002000	제 8702 호의 자동차용의 것	8	0	
8706003000	제 8703 호의 자동차용의 것	8	0	
8706004000	제 8704 호의 자동차용의 것	8	0	
8706005000	제 8705 호의 자동차용의 것	8	0	
8707100000	제 8703 호의 차량용의 것	8	0	
8707901010	소호 제 8701.20 호 또는 제 8701.90.10 호의 것	8	0	
8707901090	기타	8	0	
8707902000	제 8702 호의 자동차용의 것	8	0	
8707903000	제 8704 호의 자동차용의 것	8	0	
8707904000	제 8705 호의 자동차용의 것	8	0	
8708100000	완충기와 그 부분품	8	0	
8708210000	안전벨트	8	0	
8708290000	기타	8	0	
8708301000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8	0	
8708302000	브레이크 부스터	8	0	
8708303000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	8	0	
8708309000	기타	8	0	
870840000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8	0	
870850100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과 그 부분품	8	0	
8708502000	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8	0	
8708700000	로드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	0	
8708800000	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를 포함한다)	8	0	
8708910000	방열기와 그 부분품	8	0	
8708920000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그 부분품	8	0	
8708930000	클러치와 그 부분품	8	0	
8708940000	운전대・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 그 부분품	8	0	
8708951000	에어백	8	0	
8708959000	기타	8	0	
8708991010	제 8701 호의 자동차용의 것	8	0	
8708991020	제 8702 호의 자동차용의 것	8	0	
8708991030	제 8703 호의 자동차용의 것	8	0	
8708991040	제 8704 호의 자동차용의 것	8	0	
8708991050	제 8705 호의 자동차용의 것	8	0	
8708999000	기타	8	0	
8709110000	전기식의 것	8	0	
8709190000	기타	8	0	
8709900000	부분품	8	0	
8710001000	전차	0	0	
8710002000	기타의 자주식 장갑차량	0	0	
8710009000	부분품	0	0	
87111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102000	모페드	8	0	
8711103000	사이드카	8	0	
8711109000	기타	8	0	
87112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202000	사이드카	8	0	
8711209000	기타	8	0	
87113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302000	사이드카	8	0	
8711309000	기타	8	0	
87114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402000	사이드카	8	0	
8711409000	기타	8	0	
87115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502000	사이드카	8	0	
8711509000	기타	8	0	
87119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902000	사이드카	8	0	
871190900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712001000	경기용 자전거의 것	8	0	
8712009010	화물운반용의 것	8	0	
8712009020	삼륜자전거	8	0	
8712009090	기타	8	0	
871310000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0	0	
8713900000	기타	0	0	
8714110000	안장	8	0	
8714190000	기타	8	0	
8714200000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것	0	0	
8714911000	프레임	8	0	
8714912000	포크	8	0	
8714919000	기타 부분품	8	0	
8714921000	휠 림	8	0	
8714922000	스포크	8	0	
8714931000	허브(코스터 브레이킹허브와 허브브레이크는 제외한다)	8	0	
8714932000	프리휠 스프로켓 휠	8	0	
8714941000	코스터 브레이킹허브와 허브브레이크	8	0	
8714942000	기타 브레이크	8	0	
8714949000	이들의 부분품	8	0	
8714950000	안장	8	0	
8714961000	페달	8	0	
8714962000	크랭크 기어	8	0	
8714969000	그 부분품	8	0	
8714990000	기타	8	0	
87150000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8	0	
87161000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의 것으로서 주거 또는 캠핑용의 것에 한한다)	8	0	
8716200000	농업용의 자동적재식 또는 자동 양하식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	0	
8716310000	탱커 트레일러와 탱커 세미트레일러	8	0	
8716390000	기타	8	0	
8716400000	기타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	0	
8716801000	손수레	8	0	
8716802000	우마차	8	0	
8716803000	썰매	8	0	
8716809000	기타	8	0	
87169010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의 것	8	0	
8716909000	기타	8	0	
8801001010	글라이더	0	0	
8801001020	행글라이더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801009010	기구와 비행선	8	3	
8801009090	기타	0	0	
8802111000	군용의 것	0	0	
8802119000	기타	0	0	
8802121000	군용의 것	0	0	
8802129000	기타	0	0	
8802201000	프로펠러식의 것	0	0	
8802202000	터보프로펠러식의 것	0	0	
8802203000	터보제트식의 것	0	0	
8802209000	기타	0	0	
8802301000	프로펠러식의 것	0	0	
8802302000	터보프로펠러식의 것	0	0	
8802303000	터보제트식의 것	0	0	
8802309000	기타	0	0	
8802401000	프로펠러식의 것	0	0	
8802402000	터보프로펠러식의 것	0	0	
8802403000	터보제트식의 것	0	0	
8802409000	기타	0	0	
8802601010	인공위성	0	0	
8802601090	기타	0	0	
8802602000	우주선 운반로켓	0	0	
8802603000	서보비틀	0	0	
8803100000	프로펠러와 로터 및 그 부분품	0	0	
8803200000	기체지지부와 그 부분품	0	0	
8803301000	비행기용의 것	0	0	
8803302000	헬리콥터용의 것	0	0	
8803901000	글라이더 및 행글라이더용의 것	0	0	
8803902000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0	0	
8803909000	기타	0	0	
88040010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 및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	0	0	
8804002000	로토슈트	0	0	
880400901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 및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의 것	0	0	
8804009020	로토슈트의 것	0	0	
8805101010	군 및 경찰용의 것	0	0	
8805101090	기타	5	0	
8805102010	군 및 경찰용의 것	0	0	
8805102090	기타	5	0	
8805109010	군 및 경찰용의 것	0	0	
8805109090	기타	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805211010	군 및 경찰용의 것	0	0	
8805211090	기타	5	0	
8805212010	군 및 경찰용의 것	0	0	
8805212090	기타	5	0	
8805291010	군 및 경찰용의 것	0	0	
8805291090	기타	5	0	
8805292010	군 및 경찰용의 것	0	0	
8805292090	기타	5	0	
8901100000	순항선 · 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각종 페리보트	0	0	
8901200000	탱커	0	0	
8901300000	냉동선(소호 제 8901.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8901901000	화물선	0	0	
8901902000	화객선	0	0	
8902001010	철강선	0	0	
8902001020	에프 · 알 · 피선	0	0	
8902001030	목조선	0	0	
8902001090	기타	0	0	
8902002010	어획물의 가공선 · 저장선	0	0	
8902002090	기타	0	0	
8903100000	인플랫터블식의 것	8	0	
8903910000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8903920000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는 제외한다)	8	0	
8903991000	아웃보드 모터보트	8	0	
8903999000	기타	8	0	
8904001000	예인선	5	0	
8904002000	푸셔크라프트	5	0	
8904009000	기타	5	0	
8905100000	준설선	5	0	
8905201000	시추대	5	0	
8905202000	작업대	5	0	
8905209000	기타	5	0	
8905901000	조명선	5	0	
8905902000	소방선	5	0	
8905903000	기중기선	5	0	
8905904000	발전선	5	0	
8905905000	해난구조선	5	0	
8905906000	공작선	5	0	
8905907000	시추선	5	0	
8905908000	부선거	5	0	
8905909000	기타	5	0	
8906100000	군함	0	0	
8906900000	기타	0	0	
8907100000	인플랫터블식의 부교	5	0	
8907901000	부교(소호 제 8907.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5	0	
8907902000	탱크	5	0	
8907903000	코퍼댐	5	0	
8907904000	부잔교	5	0	
8907905000	부표	5	0	
8907906000	수로부표	5	0	
8907909000	기타	5	0	
8908001000	해체용 선박	0	0	
8908009000	기타	0	0	
9001101000	광섬유	8	0	
9001102000	광섬유다발	8	0	
9001103000	광섬유 케이블	8	0	
9001200000	편광재료제의 판	8	0	
9001300000	콘택트렌즈	8	3	
9001401000	시력 교정용의 것	8	3	
9001409000	기타	8	0	
9001501000	시력 교정용의 것	8	0	
9001509000	기타	8	3	
9001901000	프리즘	8	3	
9001902000	반사경	8	3	
9001903000	기타의 렌즈	8	0	
9001909000	기타	8	0	
9002111000	사진기용의 것	8	0	
9002119010	촬영기 및 비디오카메라용의 것	8	0	
9002119020	영사기용의 것	8	3	
9002119090	기타	8	0	
9002191000	현미경용의 것	8	0	
9002192000	천체망원경용의 것	8	3	
9002199000	기타	8	3	
9002201000	사진기용의 것	8	0	
9002209000	기타	8	3	
9002901000	사진기용의 것	8	0	
9002909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3	0	
9002909090	기타	8	0	
9003110000	플라스틱제의 것	8	0	
9003191000	귀금속을 사용한 것	8	0	
900319900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003900000	부분품	8	0	
9004101000	귀금속을 사용한 것	8	0	
9004109000	기타	8	0	
9004901010	귀금속을 사용한 것	8	0	
9004901090	기타	8	3	
9004909010	귀금속을 사용한 것	8	0	
9004909090	기타	8	5	
9005100000	쌍안경	8	3	
9005801000	단안경	8	0	
9005802010	반사망원경	8	0	
9005802020	굴절식 천체망원경	8	0	
9005802030	자오의, 적도의 또는 천정의와 경위의	8	0	
9005802090	기타	8	0	
9005809000	기타	8	0	
9005900000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8	3	
9006100000	인쇄제판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사진기	8	0	
9006301000	수중촬영용 사진기	8	0	
9006302000	공중측량용 사진기	8	0	
9006303000	내부기관의 내과용 또는 외과용 검진용 사진기	8	3	
9006304000	법정비교용 사진기	8	0	
9006401000	폴라로이드 사진기	8	0	
9006402000	스티커 사진기	8	0	
9006409000	기타	8	0	
9006511000	특수용도사진기	8	0	
9006519000	기타	8	5	
9006521000	특수용도사진기	8	0	
9006529010	문서수록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셰 또는 기타 마이크로품용의 것에 한한다)	8	3	
9006529090	기타	8	3	
9006531000	특수용도사진기	8	0	
9006539010	일회용사진기	8	0	
9006539020	문서수록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셰 또는 기타 마이크로품용의 것에 한한다)	8	3	
9006539090	기타	8	0	
9006591000	특수용도사진기	8	0	
9006599010	문서수록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셰 또는 기타 마이크로품용의 것에 한한다)	8	3	
9006599090	기타	8	3	
9006610000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에 한한다)	8	0	
9006691000	섬광전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8	3	
9006699000	기타	8	3	
9006910000	카메라용의 것	8	3	
9006990000	기타	8	3	
9007110000	폭이 16 밀리미터 미만 또는 더블 8 밀리미터의 필름용의 것	8	0	
9007191000	폭이 30 밀리미터 미만의 필름용의 것	8	3	
9007199000	기타	8	3	
9007201000	폭이 16 밀리미터 미만의 필름용의 것	8	0	
9007209010	폭이 20 밀리미터 미만의 필름용의 것	8	0	
9007209020	폭이 20 밀리미터 이상의 필름용의 것	8	0	
9007910000	촬영기용의 것	8	5	
9007920000	영사기용의 것	8	5	
9008100000	환등기	8	0	
9008200000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셰 또는 기타 마이크로품 리더(복사기능의 유무를 불문한다)	8	0	
9008300000	기타 투영기	8	0	
9008401000	인쇄제판 조정용의 것	8	0	
9008402000	마이크로 필름용의 것	8	0	
9008409000	기타	8	0	
9008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10101000	인쇄 제판용의 것	8	5	
9010102000	마이크로 필름용의 것	8	0	
9010109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9010109090	기타	8	0	
9010501000	반도체 제조용 현상기	0	0	
9010509000	기타	8	0	
9010600000	영사용 스크린	8	0	
9010901010	소호 제 9010.50.1000 호의 기기용의 것	0	0	
9010901090	기타	0	0	
9010909000	기타	8	3	
9011101000	반도체 웨이퍼 또는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장치가 부착된 것	0	0	
9011109000	기타	8	3	
9011201010	반도체 웨이퍼 또는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장치가 부착된 것	0	0	
9011201090	기타	8	0	
9011209000	기타	8	0	
9011801000	편광 현미경	8	0	
9011802000	금속 현미경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011803000	위상차 현미경	8	0	
9011804000	생물 현미경	8	0	
9011805000	비교 현미경	8	0	
9011809000	기타	8	0	
9011901000	소호 제 9011.10.1000 호, 제 9011.20.1010 호의 것	0	0	
9011909000	기타	8	3	
9012101010	일렉트론 빔 현미경(반도체 웨이퍼 또는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장치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0	0	
9012101090	기타	8	0	
9012102000	회절기기	8	0	
9012901000	소호 제 9012.10.1010 호의 것	0	0	
9012909000	기타	8	0	
9013100000	무기용의 망원조준기, 잠망경, 이 류 또는 제 16 부의 기기 부분품용의 망원경	8	0	
901320000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는 제외한다)	8	0	
9013801110	광전자식 시계용의 것	8	3	
9013801120	전자계산기용의 것	0	0	
9013801130	텔레비전용의 것	8	3	
9013801140	모니터용의 것	8	3	
9013801190	기타	8	3	
9013801910	광전자식 시계용의 것	8	3	
9013801920	전자계산기용의 것	0	0	
9013801930	텔레비전용의 것	8	3	
9013801990	기타	8	3	
9013802000	확대경, 루페, 섬유 카운터	8	0	
9013803000	도어아이	8	0	
9013809000	기타	8	3	
9013901000	소호 제 9013.80.1120 호, 제 9013.80.1920 호의 것	0	0	
9013909000	기타	8	0	
9014101010	항공기용의 것	8	0	
9014101090	기타	8	0	
9014102010	항공기용의 것	8	0	
9014102090	기타	8	0	
9014109000	기타	8	0	
9014200000	항공용 또는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는 제외한다)	8	5	
9014800000	기타 항행용 기기	8	0	
9014901000	항공기용의 것	8	0	
9014909000	기타	8	0	
9015100000	거리측정기	8	0	
9015200000	경위의와 시거의(태코미터)	8	0	
9015300000	수준기	8	0	
9015400000	사진측량기기	8	0	
9015801000	토지 측량용의 것	8	0	
9015802000	수로 측량용의 것	8	0	
9015803000	해양 측량용의 것	8	0	
9015804000	수리 계측용의 것	8	0	
9015805000	기상 관측용의 것	8	0	
9015809000	기타	8	0	
9015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8	3	
9016001000	직시식의 것	8	0	
9016002000	전자식의 것	8	0	
9016008000	기타	8	0	
9016009000	부분품 또는 부속품	8	0	
9017101000	플로터	0	0	
9017109000	기타	8	0	
9017201010	플로터	0	0	
9017201090	기타	8	0	
9017202010	플로터	0	0	
9017202090	기타	8	0	
9017203000	계산용구	8	0	
9017209000	기타	8	0	
9017301000	마이크로미터	8	0	
9017302000	다이알 게이지류	8	0	
9017303000	버어니어 캘리퍼스	8	0	
9017309000	기타	8	5	
9017801000	눈금이 든 곧은 자와 줄자	8	0	
9017809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9017809090	기타	8	3	
90179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9017909010	플로터용 인쇄회로조립품(제 8534 호의 하나 이상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0	0	
9017909020	플로터용 평판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전기발광), 플라즈마 및 기타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	0	
9017909090	기타	8	0	
9018111000	심전계	8	0	
901811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18120000	초음파 영상진단기	8	0	
9018130000	자기공명 촬영기기	8	0	
9018140000	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018191000	뇌파계	8	0	
9018192000	청력검사용 기구	8	0	
9018194000	혈압측정기기	8	0	
9018197000	환자 감시장치	8	0	
9018198000	기타	8	0	
901819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18201000	자외선 또는 적외선 응용기기	8	3	
901820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18310000	주사기(바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8	0	
9018321000	주사침	8	0	
9018322000	봉합침	8	0	
9018329000	기타	8	5	
9018391000	수혈세트 또는 수액세트	8	0	
9018392000	카테터	8	5	
9018398000	기타	8	0	
901839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3	
9018411000	치과용 드릴 엔진	8	0	
901841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18491000	치과용 바아	8	3	
9018492000	치과용 유닛	8	0	
9018493000	치석 제거기	8	3	
9018498000	기타	8	0	
901849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3	
9018501000	안과용 기기	8	3	
901850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5	
9018901000	임신진단기	8	0	
9018909010	기타 일반외과용 기기	8	5	
9018909020	산부인과용 기기	8	0	
9018909030	내시경(위내시경, 복막경, 방광경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한다)	8	0	
9018909040	인공신장기	8	0	
9018909050	인공신장기용 투석기	8	0	
9018909060	수의용 기기	8	0	
9018909080	기타	8	0	
9018909090	부분품과 부속품	8	5	
9019101000	기계요법용 기기	0	0	
9019102000	마사지용 기기	0	0	
9019103000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0	0	
90191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19201000	오존 흡입기	0	0	
9019202000	산소 흡입기	0	0	
9019203000	에어로졸 치료기	0	0	
9019204000	인공호흡기	0	0	
9019208000	기타	0	0	
90192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20001000	가스마스크	8	0	
9020008000	기타 호흡용 기기	8	0	
902000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21100000	정형외과용 또는 골절치료용의 기기	0	0	
9021210000	의치	0	0	
9021290000	기타	0	0	
9021310000	인조관절	0	0	
9021390000	기타	0	0	
9021400000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0	0	
9021500000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0	0	
9021901000	스크루, 스테이플, 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체에 삽입되는 것	0	0	
9021908000	기타	0	0	
90219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22120000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8	0	
9022130000	기타(치과용의 것에 한한다)	8	0	
9022141020	혈관조영 촬영장치	8	0	
9022141030	뼈(골)밀도측정기	8	3	
9022141090	기타	8	0	
9022142000	수의용의 것	8	0	
9022191000	물리 또는 화학시험용의 것	8	0	
9022192000	공업용의 것	8	0	
9022199000	기타	8	0	
9022211010	감마사진기	8	0	
9022211020	선형 가속치료 장치	8	0	
9022211030	코발트 치료기	8	0	
9022211090	기타	8	0	
9022212000	수의용의 것	8	0	
9022291000	물리 또는 화학시험용의 것	8	0	
9022292000	공업용의 것	8	0	
9022299000	기타	8	0	
9022300000	엑스선관	8	0	
9022901010	엑스선 발생기	8	0	
9022901020	엑스선의 스크린	8	0	
9022901030	엑스선용 고압발생기	8	0	
9022901090	기타	8	0	
902290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023001000	인체 또는 동물의 해부 전시모형	8	0	
9023009000	기타	8	0	
9024101000	경도시험기	8	0	
9024102000	항장력(인장)시험기	8	0	
9024103000	압축시험기	8	0	
9024104000	피로시험기	8	0	
9024105000	만능시험기	8	0	
9024106000	인쇄회로기판, 반도체디바이스 및 전자집적회로의 볼 또는 와이어의 접착력 또는 전단력 측정을 위한 기기	8	0	
9024109000	기타	8	0	
9024801010	신축시험기	8	0	
9024801020	마모시험기	8	0	
9024801090	기타	8	0	
9024809010	탄성시험기	8	0	
9024809020	소성시험기	8	0	
9024809090	기타	8	3	
9024901000	센서(특정의 변화량을 감지하는 소자로서 감지된 신호를 전기적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9024909000	기타	8	0	
9025111000	의료용 또는 수의용 온도계	0	0	
9025119000	기타	8	0	
9025191000	온도계	8	0	
9025192010	광학식 고온계	8	0	
9025192090	기타	8	5	
9025801000	액체 비중계 및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	8	0	
9025802010	수은 기압계	8	0	
9025802090	기타	8	0	
9025803010	건습구 습도계	8	0	
9025803020	모발 습도계	8	0	
9025803090	기타	8	0	
9025809000	기타	8	3	
9025901100	온도센서	8	0	
9025901200	습도센서	8	0	
9025901900	기타센서	8	0	
9025909000	기타	8	0	
9026101000	유량계	0	0	
9026102000	액면계	0	0	
9026109000	기타	0	0	
9026201110	액체형의 것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026201120	금속형의 것	0	0	
9026201190	기타	0	0	
9026201900	기타	0	0	
9026209000	기타	0	0	
9026801000	열측정계	0	0	
9026802000	풍력계	0	0	
9026809000	기타	0	0	
9026901100	레벨센서	0	0	
9026901200	유량 또는 유속센서	0	0	
9026901300	압력센서	0	0	
9026901400	열센서(온도센서 및 열량센서는 제외한다)	0	0	
9026901900	기타센서	0	0	
9026909000	기타	0	0	
9027100000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	8	3	
902720000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0	0	
9027301000	분광계	0	0	
9027302000	분광광도계	0	0	
9027303000	분광사진기	0	0	
9027501000	편광계	0	0	
9027502000	굴절계	0	0	
9027503000	비색계	0	0	
9027504000	조도계	0	0	
9027509000	기타	0	0	
9027801000	물리분석용 또는 화학분석용의 것	0	0	
9027802010	피·에이치 미터	0	0	
9027802020	열량계	0	0	
9027802030	점도계	0	0	
9027802040	팽창계	0	0	
9027802050	노출계	8	0	
9027802090	기타	0	0	
9027901000	마이크로톰	8	0	
9027909110	가스센서	8	0	
9027909121	분진센서	0	0	
9027909122	매연센서	8	0	
9027909130	열량센서	0	0	
9027909190	기타	0	0	
90279099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9027909991	가스 또는 매연분석기기와 마이크로톰의 것	8	3	
9027909999	기타	0	0	
9028101010	디지털식의 것	8	0	
9028101090	기타	8	3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028102000	검정용 계기	8	0	
9028201010	디지털식의 것	8	0	
9028201090	기타	8	0	
9028202000	검정용 계기	8	0	
9028301010	전류가 50 암페어 이상인 것	8	0	
9028301020	전류가 50 암페어 미만인 것	8	0	
9028302000	검정용 계기	8	3	
9028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29101000	적산회전계	8	0	
9029102000	생산량계	8	0	
9029103000	택시미터	8	0	
9029104000	주행거리계	8	0	
9029105000	기계의 작동시간 지시용 적산계기	8	0	
9029109000	기타	8	0	
9029201010	시계식의 것	8	0	
9029201090	기타	8	0	
9029202000	스트로보스코우프	8	0	
9029901100	속도센서	8	0	
9029901200	회전센서	8	0	
9029901900	기타센서	8	0	
9029909000	기타	8	0	
9030100000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0	0	
9030201010	음극선관의 것	8	0	
9030201090	기타	8	0	
9030202010	음극선관의 것	8	0	
9030202090	기타	8	0	
9030310000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8	0	
9030320000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8	0	
9030331000	전압계	8	0	
9030332000	전류계	8	0	
9030333000	회로계	8	0	
9030334000	저항계	8	0	
9030335000	검류계	8	0	
9030336000	주파수 측정기	8	0	
9030339000	기타	8	0	
9030391000	전압계	8	0	
9030392000	전류계	8	0	
9030393000	회로계	8	0	
9030394000	저항계	8	0	
9030395000	검류계	8	0	
9030396000	주파수 측정기	8	0	
9030399000	기타	8	0	
9030401000	누화계	0	0	
9030402000	게인측정계	0	0	
9030403000	만곡률계	0	0	
9030404000	잡음전압계	0	0	
9030409000	기타	0	0	
9030820000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0	0	
9030840000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8	0	
9030890000	기타	8	3	
9030901100	전자기센서	8	0	
9030901200	방사선센서	8	0	
9030901900	기타센서	8	0	
9030909010	소호 제 9030.82 호의 것(소호 제 9030.90 호의 센서를 포함한다)	0	0	
9030909090	기타	8	0	
9031100000	균형시험기	8	0	
9031200000	테스트벤치	8	0	
9031411000	포시미터	0	0	
9031419000	기타	0	0	
9031491000	광학식 표면 테스터	8	0	
9031492000	광학식 각도계 또는 앵글게이지	8	0	
9031493000	포시미터	8	0	
9031494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9031494090	기타	8	0	
9031499010	반도체웨이퍼 표면의 파티클오염상태 측정용의 것	0	0	
9031499090	기타	8	3	
9031801000	초음파 어군탐지기	8	0	
9031802000	로드셀	8	0	
9031809010	내연기관특성 시험기	8	0	
9031809020	기어 테스터	8	0	
9031809030	면적계	8	0	
9031809040	구면계	8	0	
9031809050	방직용 섬유 재료 검사장치	8	0	
9031809060	초음파 두께 측정기	8	0	
9031809070	흠, 균열 또는 기타 결함 측정기	8	3	
9031809080	동력시험기	8	0	
9031809091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9031809099	기타	8	0	
9031901111	소호 제 9031.41 호, 제 9031.49.9010 호의 것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031901119	기타의 것	0	0	
9031901190	기타	8	0	
9031901291	소호 제 9031.41 호, 제 9031.49.9010 호의 것	0	0	
9031901292	기타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9031901299	기타	8	0	
9031901911	소호 제 9031.41 호, 제 9031.49.9010 호의 것	0	0	
9031901919	기타의 것	0	0	
9031901990	기타	8	0	
9031909011	소호 제 9031.41 호, 제 9031.49.9010 호의 것	0	0	
9031909019	기타의 것	0	0	
9031909090	기타	8	0	
9032101010	냉장고용의 것	8	0	
9032101020	항공기용의 것	5	0	
9032101090	기타	8	0	
9032102000	고정식의 것	8	0	
9032200000	매노우스타트	8	0	
9032811010	항공기용의 것	5	0	
9032811090	기타	8	0	
9032812010	항공기용의 것	5	0	
9032812091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3	0	
9032812099	기타	8	0	
9032819010	항공기용의 것	5	0	
9032819090	기타	8	0	
9032891010	항공기용의 것	5	0	
9032891090	기타	8	0	
9032892010	항공기용의 것	5	0	
9032892090	기타	8	0	
9032893010	항공기용의 것	5	0	
9032893090	기타	8	0	
9032899010	항공기용의 것	5	0	
9032899090	기타	8	0	
9032901000	항공기용의 것	5	0	
9032909000	기타	8	0	
9033000000	제 90 류의 기계, 기기, 장치 또는 장비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	0	
91011100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8	0	
9101191000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8	0	
9101199000	기타	8	5	
9101210000	자동권식의 것	8	0	
910129000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101910000	전기구동식의 것	8	0	
9101990000	기타	8	3	
9102111000	맹인용의 것	8	0	
9102112000	문자판, 밴드 또는 유사한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8	0	
9102119010	밧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것	8	0	
9102119090	기타	8	0	
9102121000	밧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것	8	0	
9102129010	맹인용의 것	8	0	
9102129020	문자판, 밴드 또는 유사한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8	0	
9102129090	기타	8	0	
9102191000	밧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것	8	0	
9102199010	맹인용의 것	8	0	
9102199020	문자판, 밴드 또는 유사한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8	0	
9102199090	기타	8	0	
9102211000	맹인용의 것	8	0	
9102212000	문자판, 밴드 또는 유사한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8	0	
9102219000	기타	8	0	
9102291000	맹인용의 것	8	0	
9102292000	문자판, 밴드 또는 유사한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8	0	
9102299000	기타	8	0	
9102911000	스톱워치	8	0	
9102912000	맹인용의 것	8	0	
9102919010	밧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것	8	0	
9102919090	기타	8	0	
9102991000	스톱워치	8	0	
9102992000	맹인용의 것	8	0	
9102999000	기타	8	0	
9103101000	여행용시계	8	0	
9103109000	기타	8	0	
9103901000	여행용시계	8	0	
9103909000	기타	8	0	
9104001000	차량용의 것	8	3	
9104002000	항공기용의 것	8	0	
9104004000	선박용의 것	8	0	
9104009000	기타	8	0	
9105110000	전기구동식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105190000	기타	8	0	
9105210000	전기구동식의 것	8	0	
9105290000	기타	8	0	
9105910000	전기구동식의 것	8	0	
9105990000	기타	8	0	
9106100000	타임레지스터, 타임레코더	8	0	
9106901000	순찰시계	8	0	
9106902000	타이머	8	0	
9106903000	주차시간 기록계	8	0	
9106909000	기타	8	0	
9107001000	동기 전동기를 갖춘 것	8	0	
9107009000	기타	8	0	
91081100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또는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5	0	
9108120000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5	0	
9108190000	기타	5	0	
9108200000	자동권식의 것	5	0	
9108900000	기타	5	0	
9109110000	자명종 시계의 것	8	0	
9109190000	기타	8	0	
9109900000	기타	8	0	
9110111000	밧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것	8	0	
9110112000	자동권식의 것	8	0	
9110119000	기타	8	0	
9110121000	밧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것	8	0	
9110122000	자동권식의 것	8	0	
9110129000	기타	8	0	
9110191000	밧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것	8	0	
9110192000	자동권식의 것	8	0	
9110199000	기타	8	0	
9110901000	밧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것	8	0	
9110909000	기타	8	0	
9111100000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케이스	8	0	
9111200000	비(卑)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8	0	
9111800000	기타 케이스	8	0	
9111901000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8	0	
9111909000	기타	8	0	
9112200000	케이스	8	0	
9112900000	부분품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113100000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8	0	
9113200000	비(卑)금속제의 것(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8	0	
9113901000	플라스틱제의 것	8	0	
9113902000	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제의 것	8	0	
9113909000	기타	8	0	
911410000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8	0	
9114200000	보석	8	0	
9114300000	문자판	8	0	
9114400000	지판과 브리지	8	0	
9114900000	기타	8	0	
9201101000	자동식의 것	8	0	
9201109000	기타	8	0	
9201200000	그랜드 피아노	8	0	
9201901000	하프시코드	8	0	
9201909000	기타	8	0	
9202101000	바이올린	8	0	
9202102000	첼로	8	0	
9202109000	기타	8	0	
9202901000	기타	8	0	
9202902000	하프	8	0	
9202903000	만도린	8	0	
9202904000	밴죠우	8	0	
9202909000	기타	8	0	
9205101000	트럼펫	8	0	
9205102000	트럼본	8	0	
9205109000	기타	8	0	
9205901010	플루트	8	0	
9205901020	클라리넷	8	0	
9205901030	색소폰	8	0	
9205901040	리코오더	8	0	
9205901090	기타	8	0	
9205902010	파이프 오르간	8	0	
9205902020	리드 오르간	8	0	
9205902090	기타	8	0	
9205903010	아코디언	8	0	
9205903020	멜로디카	8	0	
9205903090	기타	8	0	
9205904000	하모니카	8	0	
9205909000	기타	8	0	
9206001000	북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206002000	목금	8	0	
9206003000	심벌	8	0	
9206004000	캐스터네츠	8	0	
9206005000	마라카스	8	0	
9206006000	탬버린	8	0	
9206009000	기타	8	0	
9207101000	오르간(신디사이저를 포함한다)	8	0	
9207103000	피아노	8	0	
9207109000	기타	8	0	
9207901000	기타	8	0	
9207902000	아코디언	8	0	
9207903000	리듬박스	8	0	
9207909000	기타	8	0	
9208100000	뮤지컬박스	8	0	
9208901000	페어그라운드 오르간	8	0	
9208902000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	8	0	
9208903000	기계식 자명조	8	0	
9208904000	뮤지컬 소오	8	0	
9208909000	기타	8	0	
9209301000	금속선제의 것	8	0	
9209309000	기타	8	0	
9209910000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8	0	
9209920000	제 9202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8	0	
9209940000	제 9207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8	0	
9209991000	뮤지컬 무브먼트의 것	8	0	
9209992000	박절기, 음차와 각종의 조율관(調律管)	8	0	
9209993000	뮤지컬 박스용의 메커니즘	8	0	
9209999000	기타	8	3	
9301110000	자주식의 것	0	0	
9301190000	기타	0	0	
9301200000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 및 이와 유사한 발사장치	0	0	
9301901000	완전자동 산탄총	0	0	
9301902010	노리쇠작동	0	0	
9301902020	반자동	0	0	
9301902030	완전자동	0	0	
9301902090	기타	0	0	
9301903000	기관총	0	0	
9301904010	완전자동 피스톨	0	0	
9301904090	기타	0	0	
9301909000	기타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302001010	리볼버	0	0	
9302001021	반자동	0	0	
9302001029	기타	0	0	
9302001030	피스톨(다열총열)	0	0	
9302001090	기타	0	0	
9302009010	리볼버	0	0	
9302009021	반자동	0	0	
9302009029	기타	0	0	
9302009030	피스톨(다열총열)	0	0	
9302009090	기타	0	0	
9303100000	총구장전화기	8	0	
9303201011	펌프작동	8	0	
9303201012	반자동	8	0	
9303201019	기타	8	0	
9303201020	산탄총(다열총열)(산탄총과 라이플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0	
9303201090	기타	8	0	
9303209011	펌프작동	8	0	
9303209012	반자동	8	0	
9303209019	기타	8	0	
9303209020	산탄총(다열총열)(산탄총과 라이플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0	
9303209090	기타	8	0	
9303301010	단발	8	0	
9303301020	반자동	8	0	
9303301090	기타	8	0	
9303309010	단발	8	0	
9303309020	반자동	8	0	
9303309090	기타	8	0	
9303900000	기타	8	0	
9304001000	공기총	8	0	
9304009000	기타	8	0	
9305101010	격발장치	0	0	
9305101020	프레임과 총몸	0	0	
9305101030	총열	0	0	
9305101040	피스톤, 잠금러그 및 가스완충기	0	0	
9305101050	탄알집 및 그 부분품	0	0	
9305101060	소음기 및 그 부분품	0	0	
9305101070	개머리판, 손잡이 및 플레이트	0	0	
9305101080	슬라이드(피스톨용)와 실린더(리볼버용)	0	0	
9305101090	기타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305109010	격발장치	8	0	
9305109020	프레임과 총몸	8	0	
9305109030	총열	8	0	
9305109040	피스톤, 잠금러그 및 가스완충기	8	0	
9305109050	탄알집 및 그 부분품	8	0	
9305109060	소음기 및 그 부분품	8	0	
9305109070	개머리판, 손잡이 및 플레이트	8	0	
9305109080	슬라이드(피스톨용)와 실린더(리볼버용)	8	0	
9305109090	기타	8	0	
9305210000	산탄총의 총열	8	0	
9305291000	격발장치	8	0	
9305292000	프레임과 총몸	8	0	
9305293000	라이플 총열	8	0	
9305294000	피스톤, 잠금러그 및 가스완충기	8	0	
9305295000	탄알집 및 그 부분품	8	0	
9305296000	소음기 및 그 부분품	8	0	
9305297000	소염기 및 그 부분품	8	0	
9305298000	브리치, 노리쇠 및 노리쇠집	8	0	
9305299000	기타	8	0	
9305911010	격발장치	0	0	
9305911020	프레임과 총몸	0	0	
9305911030	총열	0	0	
9305911040	피스톤, 잠금러그 및 가스완충기	0	0	
9305911050	탄알집 및 그 부분품	0	0	
9305911060	소음기 및 그 부분품	0	0	
9305911070	소염기 및 그 부분품	0	0	
9305911080	브리치, 노리쇠 및 노리쇠집	0	0	
9305911090	기타	0	0	
9305919000	기타	0	0	
9305990000	기타	8	0	
9306210000	탄약	0	0	
9306290000	기타	0	0	
9306301000	리베팅용 또는 이와 유사한 공구용 또는 무통 도살기용의 탄약 및 이들의 부분품	0	0	
9306309000	기타	0	0	
9306900000	기타	0	0	
9307000000	검류, 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집	0	0	
9401100000	항공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의자	0	0	
9401200000	자동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의자	8	0	
9401302000	등나무제의 것	0	0	
9401303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309000	기타	0	0	
9401401000	등나무제의 것	0	0	
9401402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409000	기타	0	0	
9401510000	대나무 또는 등나무의 것	0	0	
9401591000	등나무제의 것	0	0	
9401599000	기타	0	0	
940161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619000	기타	0	0	
940169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699000	기타	0	0	
940171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719000	기타	0	0	
940179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799000	기타	0	0	
9401801000	석재의 것	0	0	
9401809000	기타	0	0	
9401901000	목재의 것	8	0	
9401902000	금속제의 것	8	0	
9401909000	기타	8	0	
9402101010	치과용 의자	0	0	
9402101020	안과용 의자	0	0	
9402101090	기타	0	0	
9402109010	이발용 또는 미용실용 의자	0	0	
9402109090	기타	0	0	
9402901000	수술대	0	0	
9402902000	산부인과용 검진대	0	0	
9402903000	분만대	0	0	
9402908000	기타	0	0	
9402909000	부분품	0	0	
9403100000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종류의 금속제가구	0	0	
9403201000	침대	0	0	
9403209000	기타	0	0	
9403301000	책상	0	0	
9403309000	기타	0	0	
9403401000	식탁	8	0	
9403409000	기타	8	0	
9403501000	침대	0	0	
9403509000	기타	0	0	
9403601010	문갑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406001000	목제의 것	8	12	
9406009010	플라스틱제의 것	8	3	
9406009020	철강제의 것	8	0	
9406009030	알루미늄제의 것	8	0	
9406009090	기타	8	0	
9503001100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0	0	
9503001200	스쿠터	0	0	
9503001300	페달차	0	0	
9503001400	인형용의 차	0	0	
9503001800	기타	0	0	
95030019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503002110	직물제의 것	8	0	
9503002120	고무제의 것	0	0	
9503002130	플라스틱제의 것	8	0	
9503002140	도자제의 것	0	0	
9503002150	유리제의 것	0	0	
9503002160	목재의 것	0	0	
9503002190	기타	8	0	
9503002910	인형용의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8	0	
9503002990	기타	0	0	
9503003110	전기식 기차	0	0	
9503003190	부속품	0	0	
9503003200	축소모형의 조립용 킷트(작동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소호 제 9503.00.31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9503003300	기타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	0	0	
9503003411	방직용 섬유 재료제의 것	8	0	
9503003419	기타	8	0	
9503003491	방직용 섬유 재료제의 것	8	0	
9503003492	고무제의 것	0	0	
9503003493	플라스틱제의 것	8	0	
9503003494	금속제의 것	8	0	
9503003495	도자제의 것	0	0	
9503003496	유리제의 것	0	0	
9503003497	목제의 것	0	0	
9503003499	기타	8	0	
9503003500	완구용 악기류	8	0	
9503003600	퍼즐	0	0	
9503003700	기타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403601020	화장대	0	0	
9403601030	장롱	0	0	
9403601090	기타	0	0	
9403609010	문갑	0	0	
9403609020	화장대	0	0	
9403609030	장롱	0	0	
9403609090	기타	0	0	
9403701000	보행기	0	0	
9403709000	기타	0	0	
9403810000	대나무 또는 등나무의 것	0	0	
9403890000	기타	0	0	
9403900000	부분품	8	0	
9404100000	매트리스 서포트	8	3	
9404210000	셀룰로오스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	8	0	
9404290000	기타 재료의 것	8	0	
9404300000	슬리핑 백	8	0	
9404900000	기타	8	3	
940510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8	0	
9405102000	형광램프의 것	8	0	
9405109000	기타	8	0	
9405201000	필라멘트램프의 것	8	0	
9405202000	형광램프의 것	8	0	
9405209000	기타	8	5	
9405301000	필라멘트램프의 것	8	0	
9405309000	기타	8	0	
9405401000	방폭형의 것	8	0	
9405402000	투광형의 것	8	0	
9405403000	가로등의 것	8	0	
9405409000	기타	8	0	
940550000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8	0	
9405601000	네온관의 것	8	0	
9405602000	필라멘트램프의 것	8	3	
9405603000	형광램프의 것	8	0	
9405609000	기타	8	0	
9405911000	샨데리아용의 것	8	0	
9405919000	기타	8	0	
9405921000	샨데리아용의 것	8	0	
9405929000	기타	8	0	
9405991000	샨데리아용의 것	8	0	
940599900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503003800	기타 완구 및 모형(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8	0	
9503003911	풍선, 완구용 공, 연 및 이와 유사한 것	8	0	
9503003919	기타	8	0	
9503003990	부분품과 부속품(소호 제 9503.00.319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9504100000	비디오 게임용구(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	0	0	
9504201000	당구대	0	0	
9504202000	당구공	0	0	
9504209000	기타	0	0	
9504300000	기타의 게임(코인, 은행권, 은행카드, 토큰 또는 기타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에 한하며 볼링장용구는 제외한다)	0	0	
9504400000	오락용 카드	0	0	
9504901010	핀 테이블	0	0	
9504901020	핀 세터	0	0	
9504901030	볼링 볼	0	0	
9504901040	레인	0	0	
9504901050	볼링 핀	0	0	
9504901090	기타	0	0	
9504902000	전자식 게임기	0	0	
9504903000	기타 용구	0	0	
9504909010	비디오 게임기의 것	0	0	
9504909020	전자식 게임기의 것	0	0	
9504909090	기타	0	0	
9505100000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8	0	
9505900000	기타	8	3	
9506110000	스키	8	0	
9506120000	스키파스닝(스키바인딩)	8	0	
9506190000	기타	8	3	
9506210000	세일보드	8	0	
9506290000	기타	8	0	
9506310000	골프채(완제품의 것에 한한다)	8	0	
9506320000	골프공	8	0	
9506391000	골프채의 부분품	8	3	
9506399000	기타	8	0	
9506401000	탁구대	8	0	
9506402000	탁구라켓	8	0	
9506403000	탁구공	8	0	
950640900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506510000	로온테니스 라켓(줄을 맨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9506591000	배드민턴 라켓	8	0	
9506599000	기타	8	0	
9506610000	로온테니스 공	8	0	
9506621000	축구공	8	0	
9506622000	농구공	8	0	
9506623000	배구공	8	0	
9506624000	송구공	8	0	
9506625000	미식축구공	8	0	
9506629000	기타	8	0	
9506691000	배드민턴공	8	0	
9506692000	야구공	8	0	
9506699000	기타	8	0	
9506700000	아이스 스케이트와 롤러 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8	0	
9506910000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 체조 또는 육상경기용품	8	0	
9506990000	기타	8	0	
9507101000	유리섬유제의 것	8	0	
9507102000	카본제의 것	8	0	
9507109000	기타	8	0	
9507200000	낚시바늘(낚시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9507300000	낚시 릴	8	0	
9507901000	낚시용 망과 기타 낚시용구	8	0	
9507909000	기타	8	0	
9508100000	순회서커스용과 순회동물원용의 용품	8	0	
9508900000	기타	8	0	
9601100000	가공한 아이보리와 그 제품	8	0	
9601901010	진주양식용 핵	0	0	
9601901090	기타	8	0	
9601902000	뿔로 된 것	8	0	
9601903000	뼈로 된 것	8	0	
9601904000	산호제의 것	8	0	
9601909010	진주양식용 핵	0	0	
9601909090	기타	8	0	
9602001000	젤라틴 캡슐	8	0	
9602009010	가공한 식물성의 조각용재료(예: 상아야자)와 식물성의 조각용재료의 제품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608402010	메커니컬 타입의 것	8	0	
9608402090	기타	8	0	
9608500000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8	0	
9608600000	볼펜용의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에 한한다)	8	0	
9608911000	펜촉	8	0	
9608912000	닙포인트	8	0	
9608991000	부분품	8	0	
9608999000	기타	8	0	
9609101000	연필	8	0	
9609102000	색연필	8	0	
9609103000	크레용	8	0	
9609200000	연필심(검은색 또는 색깔이 있는 것에 한한다)	8	0	
9609901000	크레용 및 오일파스텔	8	0	
9609902000	파스텔	8	0	
9609903010	필기용의 것	8	0	
9609903090	기타	8	0	
9609909000	기타	8	0	
9610001000	석판	8	0	
9610002000	흑판	8	0	
9610009000	기타	8	0	
9611001000	스탬프	8	0	
9611002000	수동식의 인쇄용 세트	8	0	
9611009000	기타	8	0	
9612101000	타자기용의 것	8	0	
9612102000	자동자료처리기계용의 것	8	0	
9612109000	기타	8	0	
9612200000	잉크 패드	8	0	
9613100000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에 한한다)	8	0	
9613200000	포켓용 라이터(가스 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에 한한다)	8	0	
9613800000	기타 라이터	8	0	
9613901000	압전식 점화 유닛	8	0	
9613909000	기타	8	0	
9614001000	파이프와 파이프 볼	8	0	
9614009000	기타	8	0	
9615111000	빗	8	0	
9615119000	기타	8	0	
9615191000	빗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602009020	흑옥(광물성의 흑옥 유사품을 포함한다), 호박, 해포석, 응결한 호박 및 응결한 해포석의 가공품과 그 제품	8	0	
9602009090	기타	8	0	
9603100000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 또는 기타 식물성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에 한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9603210000	칫솔(덴탈플레이트 브러시를 포함한다)	8	0	
9603290000	기타	8	0	
9603300000	회화용의 붓, 필기용의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의 붓	8	0	
9603400000	페인트용·디스템퍼용·바니시용 또는 이와 유사한 브러시(소호 제9603.30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8	0	
9603500000	기타 브러시(기계, 기구 또는 차량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에 한한다)	8	0	
9603900000	기타	8	0	
9604000000	수동식의 체 및 어레미	8	0	
9605000000	여행세트(개인 화장용, 바느질용 또는 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의 것에 한한다)	8	0	
9606100000	프레스파스너, 스냅파스너와 프레스스터드 및 이들의 부분품	8	0	
9606210000	플라스틱제의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아니한 것	8	0	
9606220000	비(卑)금속제의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아니한 것	8	0	
9606291000	조개껍질제의 것	8	0	
9606299000	기타	8	0	
9606300000	단추의 몰드와 기타 단추의 부분품, 단추블랭크	8	0	
9607110000	체인스쿠프가 비(卑)금속제의 것	8	0	
9607191000	플라스틱제의 것	8	0	
9607199000	기타	8	0	
9607201000	비금속제의 것	8	0	
9607202000	플라스틱제의 것	8	0	
9607209000	기타	8	0	
9608100000	볼펜	8	0	
9608200000	팁이 펠트로 된 것과 기타 포러스팁으로 된 펜과 마커	8	0	
9608310000	인디언 잉크용의 드로잉 펜	8	0	
9608391000	만년필	8	0	
9608399000	기타	8	0	
9608401000	프로펠링 펜슬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615199000	기타	8	0	
9615901000	머리핀	8	0	
9615909000	기타	8	0	
9616100000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와 두부	8	0	
9616200000	화장용 분첩과 패드	8	0	
9617001000	보온병	8	0	
9617002000	보온 도시락	8	0	
9617008000	기타	8	0	
9617009000	부분품	8	0	
9618001000	마네킹 인형	8	0	
9618002000	자동 인형	8	0	
9618009000	기타	8	0	
9701101000	회화	0	0	
9701102000	데생	0	0	
9701103000	파스텔	0	0	
9701900000	기타	0	0	
9702001000	판화	0	0	
9702002000	인쇄화	0	0	
9702003000	석판화	0	0	
9703001000	조각	0	0	
9703002000	조상	0	0	
9704001000	우표	0	0	
9704009000	기타	0	0	
9705000000	수집품과 표본[동물학, 식물학, 광물학, 해부학, 사학, 고고학, 고생물학, 민족학 또는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에 한한다]	0	0	
9706001000	도자기류	0	0	
9706002000	악기류	0	0	
9706009000	기타	0	0	

1) 호주로부터 반입된 관세항목 제 0701.90.0000 호의 원산지 상품은 양허유형 E 의 규정에 따라 삭제된다. 다만, 양허유형 S-1 의 규정에 따라 삭제되는 칩용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감자는 제외한다.
2) 호주로부터 반입된 관세항목 제 2103.90.9030 호의 원산지 상품은 양허유형 5 의 규정에 따라 삭제된다. 다만, 양허유형 15 의 규정에 따라 삭제되는 고추, 마늘, 양파 또는 생강의 함유량이 각각 20 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추, 마늘, 양파 및 생강의 혼합물의 함유량이 40 퍼센트를 초과하는 혼합 조미료는 제외한다.

제 2 절
호주 관세양허표

1. 1995년도 호주 관세법과의 관계: 이 부속서 제2절에 규정된 품목은 일반적으로 1995년도 호주 관세법(관세법) 양허표 3의 상응하는 품목으로 표현되며, 이 부속서 제2절의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부속서 제2절의 품목에 대한 해석은 관세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부속서 제2절에 규정된 품목이 관세법 양허표 3의 상응하는 품목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부속서 제2절의 품목은 관세법상의 상응하는 품목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기준관세율: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10년 1월 1일 발효 중인 호주의 최혜국 관세율을 반영한다.

3. 양허단계: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은 제2.3조에 따른 호주의 관세 철폐에 적용된다.

가. 양허유형 "0" – 단계별 양허유형 "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의 발효일에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양허유형 "3" – 양허유형 3의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3.3퍼센트로 인하된 후, 이행 2년차 1월 1일부터 1.7퍼센트로 인하되고, 이행 3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 양허유형 "3A" – 양허유형 3A의 상품에 대한 복합관세 중 종가세 부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3.3퍼센트로 인하된 후, 이행 2년차 1월 1일에 1.7퍼센트로 인하된다. 양허유형 3A의 상품에 대한 복합관세 중 종량세 부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호주달러 8,000달러로 인하된 후, 이행 2년차 1월 1일에 호주달러 4,000달러로 인하된다. 이행 3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라. 양허유형 "5" – 양허유형 5의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4퍼센트로 인하된 후, 이행 2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마. 양허유형 "8A" – 양허유형 8A의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4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8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4. 품목에 대한 기준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호주 양허표의 품목에 표시된다.

5.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리거나,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최소한 가장 근접한 호주달러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6. 이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년차**란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를 말한다.

7. 이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호주 FTA 협정 호주 양허표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01	산 동물		
0101	살아있는 말 · 당나귀 · 노새와 버새		
0101.2	-말		
0101.21.00	--순종 교배용 동물	0	0
0101.29.00	--기타	0	0
0101.30.00	-당나귀	0	0
0101.90.00	-기타	0	0
0102	살아있는 소		
0102.2	-축우		
0102.21.00	--순종 교배용 동물	0	0
0102.29.00	--기타	0	0
0102.3	-버팔로		
0102.31.00	--순종 교배용 동물	0	0
0102.39.00	--기타	0	0
0102.90.00	-기타	0	0
0103	살아있는 돼지		
0103.10.00	-순종 교배용 동물	0	0
0103.9	-기타		
0103.91.00	--중량이 50 킬로그램 미만인 것	0	0
0103.92.00	--중량이 50 킬로그램 이상인 것	0	0
0104	살아있는 면양과 산양		
0104.10.00	-면양	0	0
0104.20.00	-산양	0	0
0105	살아있는 가금류[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종의 것에 한한다) · 오리 · 거위 · 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		
0105.1	-중량이 185 그램 이하인 것		
0105.11.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종의 것에 한한다)	0	0
0105.12.00	--칠면조	0	0
0105.13.00	--오리	0	0
0105.14.00	--거위	0	0
0105.15.00	--기니아새	0	0
0105.9	-기타		
0105.94.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종의 것에 한한다)	0	0
0105.99.00	--기타	0	0
0106	기타의 산 동물		
0106.1	-포유동물		
0106.11.00	--영장류	0	0
0106.12.00	--고래 ·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 및 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0106.13.00	--낙타 및 기타 낙타과의 동물(카멜리대과)	0	0
0106.14.00	--토끼	0	0
0106.19.00	--기타	0	0
0106.20.00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0	0
0106.3	-조류		
0106.31.00	--맹금류	0	0
0106.32.00	--앵무류(패로트류·파라키트류·금강앵무류 및 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0	0
0106.33.00	--타조, 에뮤(드로마이어스 노바홀란디애)	0	0
0106.39.00	--기타	0	0
0106.4	-곤충류		
0106.41.00	--벌	0	0
0106.49.00	--기타	0	0
0106.90.00	-기타	0	0
02	육과 식용설육		
0201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1.1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	0
0201.20.00	-기타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0	0
0201.30.00	-뼈 없는 것	0	0
0202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2.1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	0
0202.20.00	-기타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0	0
0202.30.00	-뼈 없는 것	0	0
0203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3.1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203.11.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	0
0203.12.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0	0
0203.19.00	--기타	0	0
0203.2	-냉동한 것		
0203.21.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	0
0203.22.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0	0
0203.29.00	--기타	0	0
0204	면양 또는 산양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4.10.00	-어린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	0
0204.2	-기타 면양의 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4.21.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	0
0204.22.00	--기타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0	0
0204.23.00	--뼈 없는 것	0	0
0204.30.0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 것에 한한다)	0	0
0204.4	-기타 면양의 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4.41.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	0
0204.42.00	--기타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0	0
0204.43.00	--뼈 없는 것	0	0
0204.50.00	-산양의 고기	0	0
0205.00.00	말·당나귀·노새 또는 버새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	0
0206	식용설육(臟肉)(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 또는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6.10.00	-소의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	0
0206.2	-소의 것(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6.21.00	--혀	0	0
0206.22.00	--간	0	0
0206.29.00	--기타	0	0
0206.30.00	-돼지의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	0
0206.4	-돼지의 것(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6.41.00	--간	0	0
0206.49.00	--기타	0	0
0206.80.00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	0
0206.90.00	-기타(냉동한 것에 한한다)	0	0
0207	육과 식용설육(제 0105 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7.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에 한한다)의 것		
0207.11.00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	0
0207.12.00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0	0
0207.13.00	--절단육 및 설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	0
0207.14.00	--절단육 및 설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0	0
0207.2	-칠면조의 것		
0207.24.00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	0
0207.25.00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0	0
0207.26.00	--절단육 및 설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	0
0207.27.00	--절단육 및 설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0	0
0207.4	오리의 것		
0207.41.00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	0
0207.42.00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0	0
0207.43.00	--지방간(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	0
0207.44.00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0301.19.00	--기타	0	0
0301.9	-기타의 활어		
0301.91.00	--송어(살모 트루타 · 앙코링쿠스 미키스 · 앙코링쿠스 클라키 ·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 앙코링쿠스 길래 ·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0	0
0301.92.00	--뱀장어(앵귈라종)	0	0
0301.93.00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씨리누스 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0	0
0301.94.00	--대서양 참다랑어 및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터너스 오리엔탈리스)	0	0
0301.95.00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멕코이)	0	0
0301.99.00	--기타	0	0
0302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 0304 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0302.1	-연어류(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2.11.00	--송어(살모 트루타 · 앙코링쿠스 미키스 · 앙코링쿠스 클라키 ·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 앙코링쿠스 길래 ·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0	0
0302.13.00	--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넬카·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앙코링쿠스 게타·앙코링쿠스 챠비챠·앙코링쿠스 키수츠·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0	0
0302.14.00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후코)	0	0
0302.19.00	--기타	0	0
0302.2	-넙치류(플루로넥티대과 · 바디대과 · 사이노글로시대과 · 솔레이대과 · 스코프탈미대과 및 시타리대과)(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2.21.00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 ·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 ·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0	0
0302.22.00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폴라테사)	0	0
0302.23.00	--서대(솔레아종)	0	0
0302.24.00	--터벗(프세타 맥시마)	0	0
0302.29.00	--기타	0	0
0302.3	-다랑어(터너스속의 것에 한한다)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유티너스(카주워누스) 펠라미스](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2.31.00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	0	0
0302.32.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0	0
0302.33.00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0207.45.00	--기타(냉동한 것에 한한다)	0	0
0207.5	-거위의 것		
0207.51.00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	0
0207.52.00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0	0
0207.53.00	--지방간(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	0
0207.54.00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	0
0207.55.00	--기타(냉동한 것에 한한다)	0	0
0207.60.00	-기니아새의 것	0	0
0208	기타 육과 식용설육(신선 ·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8.10.00	-토끼의 것	0	0
0208.30.00	-영장류의 것	0	0
0208.40.00	-고래 ·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 및 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 바다사자와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0	0
0208.50.00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의 것	0	0
0208.60.00	-낙타 및 기타 낙타과(카멜리대과)의 것	0	0
0208.90.00	-기타	0	0
0209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 및 가금의 비계(기름을 빼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추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0209.10.00	-돼지의 것	0	0
0209.90.00	-기타	0	0
0210	육과 식용설육(염장 · 염수장 · 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0210.1	-돼지고기		
0210.11.00	--넓적다리살 ·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0	0
0210.12.00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0	0
0210.19.00	--기타	0	0
0210.20.00	-쇠고기	0	0
0210.9	-기타(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을 포함한다)		
0210.91.00	--영장류의 것	0	0
0210.92.00	--고래 ·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 및 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 바다사자 및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0	0
0210.93.00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의 것	0	0
0210.99.00	--기타	0	0
03	어류 및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0301	활어		
0301.1	-관상용의 것		
0301.11.00	--민물의 것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0302.7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 메기(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타루러스종) ·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 뱀장어(앵귈라종) · 나일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및 가물치(카나종)(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2.71.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0	0
0302.72.00	--메기(판가시우스종 · 실루러스종 · 클라리아스종 · 익타루러스종)	0	0
0302.73.00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 씨리누스 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0	0
0302.74.00	--뱀장어(앵귈라종)	0	0
0302.79.00	--기타	0	0
0302.8	-기타 어류(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		
0302.81.00	--곱상어와 기타 상어	0	0
0302.82.00	--가오리와 홍어(라지대과)	0	0
0302.83.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	0	0
0302.84.00	--농어(디센트라르쿠스종)	0	0
0302.85.00	--돔(스파리대과)	0	0
0302.89.00	--기타	0	0
0302.90.00	-간과 어란	0	0
0303	냉동어류(제 0304 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0303.1	-연어류(간과 어란을 제외한다)		
0303.11.00	--소크아이 연어(홍연어)(앙코링쿠스 넬카)	0	0
0303.12.00	--기타의 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 앙코링쿠스 게타 · 앙코링쿠스 챠비차 · 앙코링쿠스 키수츠 · 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0	0
0303.13.00	--대서양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연어(후코 후코)	0	0
0303.14.00	--송어(살모 트루타 · 앙코링쿠스 미키스 · 앙코링쿠스 클라키 ·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 앙코링쿠스 길래 ·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0	0
0303.19.00	--기타	0	0
0302.34.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0	0
0302.35.00	--대서양 참다랑어 및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터너스 오리엔탈리스)	0	0
0302.36.00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멕코이)	0	0
0302.39.00	--기타	0	0
0302.4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 멸치(엔그라울리스종) ·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사르디노프스종) ·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 · 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버 자포니쿠스) ·전갱이(트라커러스종) ·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 및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2.41.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 클루페아 팔라시)	0	0
0302.42.00	--멸치(엔그로리스종)	0	0
0302.43.00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사르디노프스종) ·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 · 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0	0
0302.44.00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버 자포니쿠스)	0	0
0302.45.00	--전갱이(트라커러스종)	0	0
0302.46.00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	0	0
0302.47.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0	0
0302.5	-브레그마세로티대과 · 유클리티대과 · 가디대과 · 마크로우리대과 · 멜라노니대과 · 메르루치대과 · 모리대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과의 어류(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2.51.00	--대구(가두스 모르화 · 가두스 오각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0	0
0302.52.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0	0
0302.53.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0	0
0302.54.00	--민대구(메루키우스종 · 유르피키스종)	0	0
0302.55.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0	0
0302.56.00	--블루 화이팅스(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 ·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	0	0
0302.59.00	--기타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0303.5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 멸치(엔그로리스종) ·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사르디노프스종) ·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 · 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버 자포니쿠스) · 전갱이(트라커러스종) ·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 및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3.51.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 클루페아 팔라시)	0	0
0303.53.00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사르디노프스종) ·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 · 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0	0
0303.54.00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 · 스콤버 자포니쿠스)	0	0
0303.55.00	--전갱이(트라커러스종)	0	0
0303.56.00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	0	0
0303.57.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0	0
0303.6	-브레그마세로티대과 · 유클리티대과 · 가디대과 · 마크로우리대과 · 멜라노니대과 · 메르루치대과 · 모리대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과의 어류(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3.63.00	--대구(가두스 모르화 · 가두스 오각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0	0
0303.64.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0	0
0303.65.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0	0
0303.66.00	--민대구(메루키우스종 · 유르피키스종)	0	0
0303.67.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0	0
0303.68.00	--블루 화이팅스(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 ·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	0	0
0303.69.00	--기타	0	0
0303.8	-기타 어류(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3.81.00	--곱상어와 기타 상어	0	0
0303.82.00	--가오리와 홍어(라지대과)	0	0
0303.83.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	0	0
0303.84.00	--농어(디센트라르쿠스종)	0	0
0303.89.00	--기타	0	0
0303.90.00	-간과 어란	0	0
0304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0303.2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 메기(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타루러스종) ·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 뱀장어(앵귈라종)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및 가물치(카나종)(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3.23.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0	0
0303.24.00	--메기(판가시우스종 · 실루러스종 · 클라리아스종 · 익타루러스종)	0	0
0303.25.00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 씨리누스 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0	0
0303.26.00	--뱀장어(앵귈라종)	0	0
0303.29.00	--기타	0	0
0303.3	- 넙치류(플루로넥티대과 · 바디대과 · 사이노글로시대과 · 솔레이대과 · 스코프탈미대과 및 시타리대과)(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3.31.00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 ·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 ·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0	0
0303.32.00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	0	0
0303.33.00	--서대(솔레아종)	0	0
0303.34.00	--터벗(프세타 맥시마)	0	0
0303.39.00	--기타	0	0
0303.4	다랑어(터너스속의 것에 한한다)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3.41.00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	0	0
0303.42.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0	0
0303.43.00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	0	0
0303.44.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0	0
0303.45.00	--대서양 참다랑어 및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터너스 오리엔탈리스)	0	0
0303.46.00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멕코이)	0	0
0303.49.00	--기타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0304.3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 메기(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타루러스종) ·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 뱀장어(앵귈라종)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및 가물치(카나종)의 신선 또는 냉장한 피레트		
0304.31.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0	0
0304.32.00	--메기(판가시우스종 · 실루러스종 · 클라리아스종 · 익타루러스종)	0	0
0304.33.00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0	0
0304.39.00	--기타	0	0
0304.4	-기타 어류의 신선 또는 냉장한 피레트		
0304.41.00	--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넬카 ·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 앙코링쿠스 케타 · 앙코링쿠스 챠비챠 · 앙코링쿠스 키수츠 · 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0	0
0304.42.00	--송어(살모 트루타 · 앙코링쿠스 미키스 · 앙코링쿠스 클라키 ·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 앙코링쿠스 길래 ·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0	0
0304.43.00	-- 넙치류(플루로넥티대과 · 바디대과 · 사이노글로시대과 · 솔레이대과 · 스코프탈미대과 및 시타리대과)	0	0
0304.44.00	--브레그마세로티대과 · 유클리티대과 · 가디대과 · 마크로우리대과 · 멜라노니대과 ·모리대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과의 어류	0	0
0304.45.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0	0
0304.46.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	0	0
0304.49.00	--기타	0	0
0304.5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304.51.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 메기(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타루러스종) ·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 뱀장어(앵귈라종)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및 가물치(카나종)	0	0
0304.52.00	--연어류	0	0
0304.53.00	--브레그마세로티대과 · 유클리티대과 · 가디대과 · 마크로우리대과 · 멜라노니대과 · 메르루치대과 · 모리대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과의 어류	0	0
0304.54.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0	0
0304.55.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	0	0
0304.59.00	--기타	0	0
0304.6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 메기(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타루러스종) ·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 뱀장어(앵귈라종)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및 가물치(카나종)의 냉동한 피레트		
0304.61.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0	0
0304.62.00	--메기(판가시우스종 · 실루러스종 · 클라리아스종 · 익타루러스종)	0	0
0304.63.00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0	0
0304.69.00	--기타	0	0
0304.7	--브레그마세로티대과 · 유클리티대과 · 가디대과 · 마크로우리대과 · 멜라노니대과 · 메르루치대과 · 모리대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과의 어류의 냉동한 피레트		
0304.71.00	--대구(가두스 모르화 · 가두스 오각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0	0
0304.72.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0	0
0304.73.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0	0
0304.74.00	--민대구(메루키우스종 · 유르피키스종)	0	0
0304.75.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0	0
0304.79.00	--기타	0	0
0304.8	-기타 어류의 냉동한 피레트		
0304.81.00	--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넬카 ·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 앙코링쿠스 케타 · 앙코링쿠스 챠비챠 · 앙코링쿠스 키수츠 · 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0	0
0304.82.00	--송어(살모 트루타 · 앙코링쿠스 미키스 · 앙코링쿠스 클라키 ·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 앙코링쿠스 길래 ·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0	0
0304.83.00	-- 넙치류(플루로넥티대과 · 바디대과 · 사이노글로시대과 · 솔레이대과 · 스코프탈미대과 및 시타리대과)	0	0
0304.84.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0	0
0304.85.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	0	0
0304.86.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 클루페아 팔라시)	0	0
0304.87.00	--다랑어(터너스속의 것에 한한다)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0305.41.00	--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넬카 ·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 앙코링쿠스 케타 · 앙코링쿠스 챠비챠 · 앙코링쿠스 키수츠 · 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0	0
0305.42.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 클루페아 팔라시)	0	0
0305.43.00	--송어(살모 트루타 · 앙코링쿠스 미키스 · 앙코링쿠스 클라키 ·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 앙코링쿠스 길래 ·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0	0
0305.44.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 메기(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타루러스종) ·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 뱀장어(앵귈라종)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및 가물치(카나종)	0	0
0305.49.00	--기타	0	0
0305.5	-건조한 어류(식용의 어류 설육을 제외한 것으로서 염장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305.51.00	--대구(가두스 모르화 · 가두스 오각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0	0
0305.59.00	--기타	0	0
0305.6	-건조 또는 훈제하지 않은 염장한 어류 및 염수장한 어류(식용의 어류 설육은 제외한다)		
0305.61.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 클루페아 팔라시)	0	0
0305.62.00	--대구(가두스 모르화 · 가두스 오각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0	0
0305.63.00	--열치(엔그로리스종)	0	0
0305.64.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 메기(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타루러스종) ·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 뱀장어(앵귈라종)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및 가물치(카나종)	0	0
0305.69.00	--기타	0	0
0305.7	-어류의 지느러미 · 머리 · 꼬리 · 위 및 기타 식용의 어류설육		
0305.71.00	--상어 지느러미	0	0
0305.72.00	--어류의 머리 · 꼬리 및 위	0	0
0305.79.00	--기타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0304.89.00	--기타	0	0
0304.9	-기타(냉동한 것에 한한다)		
0304.91.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0	0
0304.92.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	0	0
0304.93.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 메기(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타루러스종) ·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 뱀장어(앵귈라종)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및 가물치(카나종)	0	0
0304.94.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0	0
0304.95.00	--브레그마세로티대과 · 유클리티대과 · 가디대과 · 마크로우리대과 · 멜라노니대과 · 메르루치대과 · 모리대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과의 어류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는 제외한다]	0	0
0304.99.00	--기타	0	0
0305	건조 · 염장 또는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이전 또는 훈제과정 동안에 조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어류의 분 · 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305.10.00	-어류의 분 · 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	0
0305.20.00	-어류의 간과 어란(건조 · 훈제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0	0
0305.3	-어류의 피레트(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305.31.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 메기(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타루러스종) ·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 뱀장어(앵귈라종)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및 가물치(카나종)	0	0
0305.32.00	--브레그마세로티대과 · 유클리티대과 · 가디대과 · 마크로우리대과 · 멜라노니대과 · 메르루치대과 · 모리대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과의 어류	0	0
0305.39.00	--기타	0	0
0305.4	-훈제한 어류(피레트를 포함하며, 식용의 어류설육은 제외한다)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산 것과 신선 · 냉장 · 냉동 · 건조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여부와 훈제과정 이전 또는 훈제과정 동안에 조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 · 냉동 · 건조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갑각류의 분 · 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306.1	-냉동한 것		
0306.11.00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 · 파누리루스종 · 자수스종)	0	0
0306.12.00	--바닷가재(호마루스종)	0	0
0306.14.00	--게	0	0
0306.15.00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	0	0
0306.16.00	--냉수성 새우류(판달러스종, 크란곤 크란곤)	0	0
0306.17.00	--기타의 새우류	0	0
0306.19.00	--기타[분 · 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	0
0306.2	-냉동하지 아니한 것		
0306.21.00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 · 파누리루스종 · 자수스종)	0	0
0306.22.00	--바닷가재(호마루스종)	0	0
0306.24.00	--게	0	0
0306.25.00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	0	0
0306.26.00	--냉수성 새우류(판달러스종, 크란곤 크란곤)	0	0
0306.27.00	--기타 새우류	0	0
0306.29.00	--기타[분 · 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	0
0307	연체동물 [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산 것과 신선 · 냉장 · 냉동 · 건조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여부와 훈제과정 이전 또는 훈제과정 동안에 조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연체동물의 분 · 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307.1	-굴		
0307.11.00	--산 것 ·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	0
0307.19.00	--기타	0	0
0307.2	-가리비과의 조개(펙텐 · 클라미스 또는 프라코펙텐속의 것으로서 여왕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0307.21.00	--산 것 ·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	0
0307.29.00	--기타	0	0
0307.3	-홍합(미틸루스종 · 페르나종)		
0307.31.00	--산 것 ·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	0
0307.39.00	--기타	0	0
0307.4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 · 로시아 마크로소마 · 세피올라종) 및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종 · 로리고종 · 노토토다루스종 · 세피오투디스종)		
0307.41.00	--산 것 ·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	0
0307.49.00	--기타	0	0
0307.5	-문어(옥토퍼스종)		
0307.51.00	--산 것 ·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	0
0307.59.00	--기타	0	0
0307.60.00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0	0
0307.7	-클램, 새조개 및 피조개(아르치대과 · 아르크티치대과 · 카르디대과 · 도나치대과 · 히아텔리대과 · 마르크트리대과 · 메소데스마티대과 · 마이이대과 · 세멜리대과 · 솔레쿠르티대과 · 솔레니대과 · 트리다크니대과 및 베네리대과)		
0307.71.00	--산 것 ·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	0
0307.79.00	--기타	0	0
0307.8	-전복(할리오티스종)		
0307.81.00	--산 것 ·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	0
0307.89.00	--기타	0	0
0307.9	-기타[분 · 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307.91.00	--산 것 ·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	0
0307.99.00	--기타	0	0
0308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 · 냉장 · 냉동 · 건조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훈제과정 이전 또는 훈제과정 동안에 조리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한다)의 분 · 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0308.1	-해삼(스티코푸스 자포니쿠스, 홀로투리오이대과)		
0308.11.00	--산 것 ·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	0
0308.19.00	--기타	0	0
0308.2	-성게(스트론길로센트로투스종 · 파라센트로투스 리비두스 · 록세치누스 알버스 · 에치치누스 에스쿨렌투스)		
0308.21.00	--산 것 ·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	0
0308.29.00	--기타	0	0
0308.30.00	-해파리(로필레마종)	0	0
0308.90.00	-기타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물품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401.10.00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 퍼센트 이하인 것	0	0
0401.20.00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 퍼센트를 초과하고 6 퍼센트 이하인 것	0	0
0401.40.00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 퍼센트를 초과하고 10 퍼센트 이하인 것	0	0
0401.50.00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0	0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0402.10.00	-분상·입상 또는 기타 고체상태인 것으로서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5 퍼센트 이하인 것	0	0
0402.2	-분상·입상 또는 기타 고체상태인 것으로서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0402.21.00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0	0
0402.29.00	--기타	0	0
0402.9	-기타		
0402.91.00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0	0
0402.99.00	--기타	0	0
0403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실,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0403.10.00	-요구르트	0	0
0403.90.00	-기타	0	0
0404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404.10.00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0404.90.00	-기타	0	0
0405	버터 및 기타 지와 유(밀크에서 얻어진 것에 한한다), 데어리 스프레드		
0405.10.00	-버터	0	0
0405.20.00	-데어리 스프레드	4	0
0405.90.00	-기타	0	0
0406	치즈와 커드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0406.10.00	-신선한(숙성되지 아니한 것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	킬로그램당 1.220 달러	0
0406.20.00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킬로그램당 1.220 달러	0
0406.30.00	-가공치즈(갈았거나 분상의 것은 제외한다)	킬로그램당 1.220 달러	0
0406.40	-블루바인 치즈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로 생산된 바인을 함유한 기타 치즈		
0406.40.10	---다음과 같은 유형의 치즈: (가) 로우크포티, (나) 스틸턴	0	0
0406.40.90	---기타	킬로그램당 1.220 달러	0
0406.90	-기타 치즈		
0406.90.10	---다음과 같은 유형의 치즈: (가) 페타 또는 카세리는 제외하고 전적으로 산양유로 만들어진 치즈, (나) 다음을 함유한 표면이 숙성된 부드러운 치즈 (1) 건조상태로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 퍼센트 이상인 것, (2) 지방이 없는 상태에서 수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5 퍼센트 이상인 것	0	0
0406.90.90	---기타	킬로그램당 1.220 달러	0
0407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처리 또는 조리한 것에 한한다)		
0407.1	-부화용 수정란		
0407.11.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에 한한다)의 것	0	0
0407.19.00	--기타	0	0
0407.2	-기타 신선란		
0407.21.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에 한한다)의 것	0	0
0407.29.00	--기타	0	0
0407.90.00	-기타	0	0
0408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 및 난황(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찌거나 삶은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0408.1	-난황		
0408.11.00	--건조한 것	0	0
0408.19.00	--기타	0	0
0408.9	-기타		
0408.91.00	--건조한 것	0	0
0408.99.00	--기타	0	0
0409.00.00	천연꿀	0	0
0410.00.00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0511.9	-기타		
0511.91.00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생산품, 제 3 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0	0
0511.99	--기타		
0511.99.10	---마모와 그 웨이스트(층상으로 한 것인지 또는 지지물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5	0
0511.99.90	---기타	0	0
06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와 장식용의 잎		
0601	인경 · 괴경 · 괴근 · 구경 및 근경(휴면상태의 것으로서,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에 한한다),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제 1212 호의 뿌리는 제외한다)		
0601.10.00	-인경 · 괴경 · 괴근 · 구경 및 근경(휴면상태의 것에 한한다)	0	0
0601.20.00	-인경 · 괴경 · 괴근 · 구경 및 근경(휴면상태의 것으로서,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에 한한다),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	0	0
0602	기타 산 식물(뿌리를 포함한다) · 삽수 및 접수, 버섯의 종균		
0602.10.00	-뿌리가 없는 삽수와 접수	0	0
0602.20.00	-수목 및 관목(식용의 과실 또는 견과류의 것으로서 접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0602.30.00	-진달래 속의 식물 및 철쭉(접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0602.40.00	-장미(접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0602.90.00	-기타	0	0
0603	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 · 염색 · 표백 · 침투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0603.1	-신선한 것		
0603.11.00	--장미	0	0
0603.12.00	--카네이션	0	0
0603.13.00	--난	0	0
0603.14.00	--국화	0	0
0603.15.00	--백합(릴리움종)	0	0
0603.19.00	--기타	0	0
0603.90.00	-기타	0	0
0604	식물의 잎 · 가지 및 기타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에 한한다)과 풀 · 이끼 및 지의(신선한 것과 건조 · 염색 · 표백 · 침투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05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0501.00.00	인모(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세척한 것인지 또는 세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인모의 웨이스트	0	0
0502	돼지털 · 멧돼지털 · 오소리털 및 기타 브러시 제조용 수모와 그 웨이스트		
0502.10.00	-돼지털 · 멧돼지털 및 그 웨이스트	0	0
0502.90.00	-기타	0	0
0504.00.00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 · 방광 및 위의 전체 및 단편(신선 · 냉장 · 냉동 · 염장 · 염수장 · 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0	0
0505	우모 또는 솜털이 붙은 새의 피와 기타 부분, 우모 및 우모의 부분(가장자리가 정리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솜털(청정, 소독 또는 보존을 위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우모 또는 우모의 부분의 분과 웨이스트		
0505.10.00	-솜털, 충전재용 깃털	0	0
0505.90.00	-기타	0	0
0506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06.10.00	-골소와 뼈(산처리한 것에 한한다)	0	0
0506.90.00	-기타	0	0
0507	아이보리 · 귀갑 · 고래수염과 그 털 · 뿔 · 사슴뿔 · 발굽 · 손톱 · 발톱 및 부리(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07.10.00	-아이보리, 아이보리의 분과 웨이스트	0	0
0507.90.00	-기타	0	0
0508.00.00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연체동물 · 갑각류 또는 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	0
0510.00.00	용연향 · 해리향 · 시빗과 사향, 캔대리디즈, 담즙(건조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의약품 제조용의 선(腺)이나 기타 동물성 생산품(신선 · 냉장 · 냉동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0	0
0511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제 1 류 또는 제 3 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0511.10.00	-소의 정액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0604.20.00	-신선한 것	0	0
0604.90.00	-기타	0	0
07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0701	감자(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1.10.00	-종자	0	0
0701.90.00	-기타	0	0
0702.00.00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	0
0703	양파·쪽파·마늘·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3.10.00	-양파와 쪽파	0	0
0703.20.00	-마늘	0	0
0703.90.00	-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	0	0
0704	양배추·꽃양배추·구경양배추·케일 및 이와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4.10.00	-꽃양배추 및 결구된 브로콜리	0	0
0704.20.00	-방울다다기 양배추	0	0
0704.90.00	-기타	0	0
0705	상추(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종)(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5.1	-상추		
0705.11.00	--결구상추	0	0
0705.19.00	--기타	0	0
0705.2	-치커리		
0705.21.00	--위트루우프치커리(시코리엄-인티버스변종, 포리오섬)	0	0
0705.29.00	--기타	0	0
0706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仙茅)·셀러리악·무 및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6.10.00	-당근과 순무	0	0
0706.90.00	-기타	0	0
0707.00.00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	0
0708	채두류(꼬투리 유무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8.10.00	-완두(피셈 새티범)	0	0
0708.20.00	-콩(비그나종·파세러스종)	0	0
0708.90.00	-기타 채두류	0	0
0709	기타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9.20.00	-아스파라거스	0	0
0709.30.00	-가지(에그플랜트)	0	0
0709.40.00	-셀러리(셀러리악은 제외한다)	0	0
0709.5	-버섯과 송로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0709.51.00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5	0
0709.59.00	--기타	5	0
0709.60.00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0	0
0709.70.00	-시금치류	0	0
0709.9	-기타		
0709.91.00	--구상의 양엉겅퀴	0	0
0709.92.00	--올리브	0	0
0709.93.00	--호박류(쿠쿠르비타종)	0	0
0709.99.00	--기타	0	0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찌거나 삶아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		
0710.10.00	-감자	5	0
0710.2	-채두류(꼬투리 유무를 불문한다)		
0710.21.00	--완두(피섬 새티범)	0	0
0710.22.00	--콩(비그나종·파세러스종)	0	0
0710.29.00	--기타	5	0
0710.30.00	-시금치류	5	0
0710.40.00	-스위트콘	5	0
0710.80.00	-기타 채소	5	0
0710.90.00	-채소류의 혼합물	5	0
0711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 저장용액 등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711.20.00	-올리브	0	0
0711.40.00	-오이류	0	0
0711.5	-버섯과 송로		
0711.51.00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0	0
0711.59.00	--기타	0	0
0711.90.00	-기타 채소, 채소류의 혼합물	0	0
0712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2.20.00	-양파	5	0
0712.3	-버섯, 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종), 젤리균류(트레멜라종) 및 송로		
0712.31.00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5	0
0712.32.00	--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종)	5	0
0712.33.00	--젤리균류(트레멜라종)	5	0
0712.39.00	--기타	5	0
0712.90	-기타 채소, 채소류의 혼합물		
0712.90.10	---감자	5	0
0712.90.90	---기타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0713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0713.10.00	-완두(피셈 새티범)	0	0
0713.20.00	-이집트 콩(가반조스)	0	0
0713.3	-콩(비그나종 · 파세러스종)		
0713.31.00	--녹두[비그나 멍고(엘) 헤파 또는 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윌크젝종]	0	0
0713.32.00	--팥(아주기) (파세러스 또는 비그나 앵구라리스)	0	0
0713.33.00	--강낭콩(흰 완두콩을 포함한다) (파세러스 불가리스)	0	0
0713.34.00	--밤바라콩(비그나 서브터라니아 또는 보안드제이아 서브터라니아)	0	0
0713.35.00	--동부콩(비그나 운구이쿨라타)	0	0
0713.39.00	--기타	0	0
0713.40.00	-렌즈콩	0	0
0713.50.00	-잠두(비시아 파바변종, 메이저) 및 말먹이용의 잠두(비시아 파바변종, 에퀴나, 비시아 파바변종, 마이너)	0	0
0713.60.00	-비둘기콩(카자누스 카잔)	0	0
0713.90.00	-기타	0	0
0714	매니옥 · 칡뿌리 · 살렙 · 국아 · 고구마 및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이와 유사한 뿌리 및 괴경(얇게 썬 것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 냉장 · 냉동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사고야자의 수		
0714.10	-매니옥(카사바)		
0714.10.10	---냉동한 것	5	0
0714.10.90	---기타	0	0
0714.20	-고구마		
0714.20.10	---냉동한 것	5	0
0714.20.90	---기타	0	0
0714.30	-얌(디오스코레아종)		
0714.30.10	---냉동한 것	5	0
0714.30.90	---기타	0	0
0714.40	-토란(콜로카시아종)		
0714.40.10	---냉동한 것	5	0
0714.40.90	---기타	0	0
0714.50	-아메리카토란(크산토소마종)		
0714.50.10	---냉동한 것	5	0
0714.50.90	---기타	0	0
0714.90	-기타		
0714.90.10	---냉동한 것	5	0
0714.90.90	---기타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08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0801	코코넛 · 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한다)		
0801.1	-코코넛		
0801.11.00	--말린 것	0	0
0801.12.00	--내피를 탈각하지 아니한 것(내과피)	0	0
0801.19.00	--기타	0	0
0801.2	-브라질넛		
0801.21.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0	0
0801.22.00	--탈각한 것	0	0
0801.3	-캐슈넛		
0801.31.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0	0
0801.32.00	--탈각한 것	0	0
0802	기타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한다)		
0802.1	-아몬드		
0802.11.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5	0
0802.12.00	--탈각한 것	5	0
0802.2	-헤즐너트 또는 필버트(코리루스종)		
0802.21.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0	0
0802.22.00	--탈각한 것	0	0
0802.3	-호두		
0802.31.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0	0
0802.32.00	--탈각한 것	0	0
0802.4	-밤(카스타네아종)		
0802.41.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0	0
0802.42.00	--탈각한 것	0	0
0802.5	-피스타치오		
0802.51.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0	0
0802.52.00	--탈각한 것	0	0
0802.6	-마카다미아 너트		
0802.61.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0	0
0802.62.00	--탈각한 것	0	0
0802.70.00	-콜라 너트(콜라종)	0	0
0802.80.00	-빈랑자	0	0
0802.90.00	-기타	0	0
0803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3.10.00	-플랜틴	0	0
0803.90.00	-기타	0	0
0804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구아버·망고 및 망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0804.10.00	-대추야자	0	0
0804.20.00	-무화과	0	0
0804.30.00	-파인애플	0	0
0804.40.00	-아보카도	0	0
0804.50.00	-구아버·망고 및 망고스틴	0	0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5.10.00	-오렌지	0	0
0805.20.00	-맨더린(탄제린 및 세트수머를 포함한다), 클레멘타인·윌킹 및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0	0
0805.40.00	-그레이프프루트(포멜로우를 포함한다)	0	0
0805.50.00	-레몬(시트러스 리몬 및 시트러스 리머늄)과 라임(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 및 시트러스 라티폴리아)	0	0
0805.90.00	-기타	0	0
0806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6.10.00	-신선한 것	5	0
0806.20.00	-건조한 것	5	0
0807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파파야)(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7.1	-멜론(수박을 포함한다)		
0807.11.00	--수박	0	0
0807.19.00	--기타	0	0
0807.20.00	-포포우(파파야)	0	0
0808	사과·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8.10.00	-사과	0	0
0808.30.00	-배	0	0
0808.40.00	-마르멜로	0	0
0809	살구·버찌·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자두 및 슬로우(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9.10.00	-살구	0	0
0809.2	-버찌		
0809.21.00	--신버찌(프루너스 체라서스)	0	0
0809.29.00	--기타	0	0
0809.30.00	-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0	0
0809.40.00	-자두와 슬로우	0	0
0810	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0810.10.00	-초본류 딸기	0	0
0810.20.00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 및 로간베리	0	0
0810.30.00	-흑색, 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와 구즈베리	0	0
0810.40.00	-크랜베리·빌베리와 기타 박시니엄속의 과실	0	0
0810.50.00	-키위프루트	0	0
0810.60.00	-두리언	0	0
0810.70.00	-감	0	0
0810.90.00	-기타	0	0
0811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찌거나 삶은 것에 한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811.10.00	-초본류 딸기	4	0
0811.20.00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로간베리와 흑색·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 및 구즈베리	0	0
0811.90.00	-기타	0	0
0812	일시 저장처리한 과실과 견과류(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 저장용액등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812.10.00	-버찌	0	0
0812.90.00	-기타	0	0
0813	건조한 과실(제 0801 호부터 제 0806 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3.10.00	-살구	5	0
0813.20.00	-프룬	5	0
0813.30.00	-사과	5	0
0813.40.00	-기타 과실	5	0
0813.50.00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5	0
0814.00.00	감귤류의 껍질 또는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 냉동, 건조 또는 염수·유황수 또는 기타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에 한한다)	0	0
09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0901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커피의 각과 피,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커피의 함량은 불문한다)		
0901.1	-커피(볶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901.11.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0	0
0901.12.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0	0
0901.2	-커피(볶은 것에 한한다)		
0901.21.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0	0
0901.22.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0	0
0901.90.00	-기타	0	0
0902	차류(가향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902.10.00	-녹차(발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내용물의 무게가 3 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에 한한다)	0	0
0902.20.00	-기타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0902.30.00	-흥차(발효차)와 부분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 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에 한한다)	0	0
0902.40.00	-기타 흥차(발효차)와 기타 부분발효차	0	0
0903.00.00	마태	0	0
0904	후추(파이퍼속의 것에 한한다), 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0904.1	-후추		
0904.11.00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0	0
0904.12.00	--파쇄 또는 분쇄한 것	0	0
0904.2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0904.21.00	--건조한 것(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0	0
0904.22.00	--파쇄 또는 분쇄한 것	0	0
0905	바닐라		
0905.10.00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0	0
0905.20.00	-파쇄 또는 분쇄한 것	0	0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0906.1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0906.11.00	--계피(신나모멈 제이라니쿰 블룸)	0	0
0906.19.00	--기타	0	0
0906.20.00	-파쇄 또는 분쇄한 것	0	0
0907	정향[과실 · 꽃 및 화경(花莖)에 한한다]		
0907.10.00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0	0
0907.20.00	-파쇄 또는 분쇄한 것	0	0
0908	육두구 · 메이스 및 소두구		
0908.1	-육두구		
0908.11.00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0	0
0908.12.00	--파쇄 또는 분쇄한 것	0	0
0908.2	-메이스		
0908.21.00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0	0
0908.22.00	--파쇄 또는 분쇄한 것	0	0
0908.3	-소두구		
0908.31.00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0	0
0908.32.00	--파쇄 또는 분쇄한 것	0	0
0909	아니스 · 대회향 · 회향 · 코리앤더 · 커민 또는 캐러웨이의 씨, 주니퍼의 열매		
0909.2	-코리앤더의 씨		
0909.21.00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0	0
0909.22.00	--파쇄 또는 분쇄한 것	0	0
0909.3	-커민의 씨		
0909.31.00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0	0
0909.32.00	--파쇄 또는 분쇄한 것	0	0
0909.6	-아니스 · 대회향 · 캐러웨이 또는 희향의 씨, 주니퍼의 열매		
0909.61.00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0	0
0909.62.00	--파쇄 또는 분쇄한 것	0	0
0910	생강 · 샤프란 · 심황(강황) · 타임 · 월계수의 잎 · 카레 및 기타 향신료		
0910.1	-생강		
0910.11.00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0	0
0910.12.00	--파쇄 또는 분쇄한 것	0	0
0910.20.00	-샤프란	0	0
0910.30.00	-심황(강황)	0	0
0910.9	-기타 향신료		
0910.91.00	--혼합물(이 류의 주 제 I 호나목의 것에 한한다)	0	0
0910.99.00	--기타	0	0
10	곡물		
1001	밀과 메슬린		
1001.1	-듀럼종의 밀		
1001.11.00	--종자	0	0
1001.19.00	--기타	0	0
1001.9	-기타		
1001.91.00	--종자	0	0
1001.99.00	--기타	0	0
1002	호밀		
1002.10.00	-종자	0	0
1002.90.00	-기타	0	0
1003	보리		
1003.10.00	-종자	0	0
1003.90.00	-기타	0	0
1004	귀리		
1004.10.00	-종자	0	0
1004.90.00	-기타	0	0
1005	옥수수		
1005.10.00	-종자	0	0
1005.90.00	-기타	0	0
1006	쌀		
1006.10.00	-벼	0	0
1006.20.00	-현미	0	0
1006.30.00	-정미(연마 또는 광택 여부를 불문한다)	0	0
1006.40.00	-쇄미	0	0
1007	수수		
1007.10.00	-종자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1106	건조한 채두류(제 0713 호의 것), 사고·뿌리 또는 괴경(제 0714 호의 것)과 제 8 류의 물품의 분·조분과 분말		
1106.10.00	-건조한 채두류의 것(제 0713 호의 것에 한한다)	0	0
1106.20.00	-사고·뿌리 또는 괴경의 것(제 0714 호의 것에 한한다)	0	0
1106.30.00	-제 8 류의 물품의 것	0	0
1107	맥아(볶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107.10.00	-볶지 아니한 것	0	0
1107.20.00	-볶은 것	0	0
1108	전분, 이눌린		
1108.1	-전분		
1108.11.00	--밀의 것	0	0
1108.12.00	--옥수수의 것	0	0
1108.13.00	--감자의 것	5	0
1108.14.00	--매니옥(카사바)의 것	0	0
1108.19.00	--기타 전분	5	0
1108.20.00	-이눌린	0	0
1109.00.00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12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곡물,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201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1.10.00	-종자	0	0
1201.90.00	-기타	0	0
1202	낙화생(볶거나 기타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탈각 또는 파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202.30.00	-종자	5	0
1202.4	-기타		
1202.41.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5	0
1202.42.00	--탈각한 것(파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0
1203.00.00	코프라	0	0
1204.00.00	아마인(파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1205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파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205.10.00	-저에루크산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	0	0
1205.90.00	-기타	0	0
1206.00.00	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1207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207.10.00	-팜넛과 핵	0	0
1207.2	-면실		
1207.21.00	--종자	0	0
1207.29.00	--기타	0	0
1207.30.00	-피마자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1007.90.00	-기타	0	0
1008	메밀·밀리트 및 카나리시드, 기타 곡물		
1008.10.00	-메밀	0	0
1008.2	-밀리트		
1008.21.00	--종자	0	0
1008.29.00	--기타	0	0
1008.30.00	-카나리시드	0	0
1008.40.00	-포니오(디지타리아종)	0	0
1008.50.00	-퀴노아(체노포디움 퀴노아)	0	0
1008.60.00	-라이밀	0	0
1008.90.00	-기타 곡물	0	0
11	제분공업의 생산품,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		
1101.00.00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0	0
1102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는 제외한다)		
1102.20.00	-옥수수가루	0	0
1102.90.00	-기타	0	0
1103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1103.1	-분쇄물 및 조분		
1103.11.00	--밀가루	0	0
1103.13.00	--옥수수의 것	0	0
1103.19.00	--기타 곡물의 것	0	0
1103.20.00	-펠리트	0	0
1104	기타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 1006 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1104.1	-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		
1104.12.00	--귀리의 것	0	0
1104.19.00	--기타 곡물의 것	0	0
1104.2	-기타 가공곡물(예: 껍질을 벗긴것·진주상의 것·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에 한한다)		
1104.22.00	--귀리의 것	0	0
1104.23.00	--옥수수의 것	0	0
1104.29.00	--기타 곡물의 것	0	0
1104.30.00	-곡물의 배아(원상의 것·압축한 것·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에 한한다)	0	0
1105	감자의 분·조분·분말·플레이크·입 및 펠리트		
1105.10.00	-분·조분과 분말	5	0
1105.20.00	-플레이크·입 및 펠리트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1212	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 기타 조류,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냉장·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 식물성 생산품(볶지 아니한 시코리엄 인티버스 새티범 변종의 치커리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212.2	-해초류와 기타 조류		
1212.21	--식용의 것		
1212.21.10	---냉동한 것	5	0
1212.21.90	---기타	0	0
1212.29	--기타		
1212.29.10	---냉동한 것	5	0
1212.29.90	---기타	0	0
1212.9	-기타		
1212.91.00	--사탕무	0	0
1212.92.00	--로우커스트두(캐롭)	0	0
1212.93.00	--사탕수수	0	0
1212.94.00	--치커리뿌리	0	0
1212.99.00	--기타	0	0
1213.00.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압착 또는 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1214	스위드·맹골드·사료용 근채류·건초·루우산(알팔파)·클로버·샌포인·사료용 케일·루핀·베치 및 이와 유사한 사료용 생산품(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214.10.00	-루우산(알팔파)의 조분과 펠리트	0	0
1214.90.00	-기타	0	0
13	락, 검·수지 및 기타 식물성 수액과 엑스		
1301	락, 천연검·수지·검수지 및 올레오레진(예: 발삼)		
1301.20.00	-아라비아 검	0	0
1301.90.00	-기타	0	0
1302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닌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기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302.1	-식물성 수액과 엑스		
1302.11.00	--아편	0	0
1302.12.00	--감초의 것	0	0
1302.13.00	--호프의 것	5	0
1302.19	--기타		
1302.19.10	---생강(진저린)의 올레오레진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1207.40.00	-참깨	0	0
1207.50.00	-겨자씨	0	0
1207.60.00	-잇꽃(카르타무스 틴크토리우스)씨	0	0
1207.70.00	-멜론 종자	0	0
1207.9	-기타		
1207.91.00	--양귀비씨	0	0
1207.99.00	--기타	0	0
1208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 또는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의 분과 조분은 제외한다)		
1208.10.00	-대두의 것	0	0
1208.90.00	-기타	0	0
1209	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		
1209.10.00	-사탕무 종자	0	0
1209.2	-사료용 식물의 종자		
1209.21.00	--루우산(알팔파) 종자	0	0
1209.22.00	--클로버(트리폴리엄종) 종자	0	0
1209.23.00	--페스큐 종자	0	0
1209.24.00	--켄터키블루그래스(포아프래텐시스 엘) 종자	0	0
1209.25.00	--라이그래스 종자(로오리엄 멀티플로럼 램 및 로오리엄 페레네 엘)	0	0
1209.29.00	--기타	0	0
1209.30.00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0	0
1209.9	-기타		
1209.91.00	--채소 종자	0	0
1209.99.00	--기타	0	0
1210	호프(신선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 분말상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루플린		
1210.10.00	-호프(분쇄한 것, 분상 또는 펠리트상의 것은 제외한다)	5	0
1210.20.00	-호프(분쇄한 것, 분상 또는 펠리트상의 것에 한한다), 루플린	5	0
1211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211.20.00	-인삼뿌리	0	0
1211.30.00	-코카잎	0	0
1211.40.00	-양귀비줄기	0	0
1211.90.00	-기타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1302.19.90	--기타	0	0
1302.20.00	-펙틴질·펙티닌산염 및 펙틴산염	0	0
1302.3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302.31.00	--한천	0	0
1302.32.00	--로우커스트두·로우커스트두의 씨 또는 구아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1302.39.00	--기타	0	0
14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1401	편조물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대·등·갈대·골풀·양버드나무·라피아 및 청정·표백 또는 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수피)		
1401.10.00	-대	0	0
1401.20.00	-등	0	0
1401.90.00	-기타	0	0
1404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1404.20.00	-면린터	0	0
1404.90.00	-기타	0	0
15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1501	돈지(라드를 포함한다)와 가금지(제 02909 호 또는 제 1503.00.00 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1.10.00	-라드	0	0
1501.20.00	-기타의 돈지	0	0
1501.90.00	-기타	0	0
1502	소·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 1503.00.00 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2.10.00	-탤로우	0	0
1502.90.00	-기타	0	0
1503.00.00	라드스테아린, 라드유, 올레오스테아린, 올레오유 및 탤로우유(유화·혼합 또는 기타의 조제를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1504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4.10.00	-어류의 간유와 그 분획물	0	0
1504.20.00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간유는 제외한다)	0	0
1504.30.00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	0	0
1505.00.00	울그리스와 이로부터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을 포함한다)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1506.00.00	기타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0	0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7.10.00	-조유[검(gum)질을 제거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0
1507.90.00	-기타	5	0
1508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8.10.00	-조유	5	0
1508.90.00	-기타	5	0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9.10.00	-버어진	0	0
1509.90.00	-기타	0	0
1510.00.00	기타 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만 얻어진 것으로서 정제 여부를 불문하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하며, 이들의 유 또는 그 분획물이 제 1509 호의 유 또는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0	0
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1.10.00	-조유	0	0
1511.90.00	-기타	0	0
1512	해바라기씨유·잇꽃유 또는 면실유 및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2.1	-해바라기씨유 또는 잇꽃유와 그 분획물		
1512.11.00	--조유	5	0
1512.19.00	--기타	5	0
1512.2	-면실유와 그 분획물		
1512.21.00	--조유(고시폴을 제거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0
1512.29.00	--기타	5	0
1513	야자(코프라)유,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3.1	-야자(코프라)유와 그 분획물		
1513.11.00	--조유	0	0
1513.19.00	--기타	0	0
1513.2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		
1513.21.00	--조유	0	0
1513.29.00	--기타	0	0
1514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또는 겨자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1514.1	-저에루크산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와 그 분획물		
1514.11.00	--조유	5	0
1514.19.00	--기타	5	0
1514.9	-기타		
1514.91.00	--조유	5	0
1514.99.00	--기타	5	0
1515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바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5.1	-아마인유와 그 분획물		
1515.11.00	--조유	5	0
1515.19.00	--기타	5	0
1515.2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1515.21.00	--조유	0	0
1515.29.00	--기타	5	0
1515.30.00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0	0
1515.5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0	0
1515.90.00	-기타	0	0
1516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리에스텔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 여부를 불문하나,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6.10.00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0	0
1516.20.00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0	0
1517	마가린,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기타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 1516 호의 식용유지 또는 그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		
1517.10.00	-마가린(액상마가린은 제외한다)	5	0
1517.90.00	-기타	5	0
1518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 하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기타 화학적 변성을 한 것에 한하며, 제 151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식물성 유지 또는 이 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1518.00.10	---에폭시화한 식물성 오일	5	0
1518.00.90	---기타	0	0
1520.00.00	글리세롤(조상의 것에 한한다), 글리세롤 수 및 글리세롤 폐액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1521	식물성 납(트리글리세라이드는 제외한다)·밀랍, 기타 곤충납과 경납(정제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521.10.00	-식물성 납	0	0
1521.90.00	-기타	0	0
1522.00.00	데그라스, 지방성 물질 또는 동식물성 납의 처리시에 생기는 잔유물	0	0
16	육류·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601.00.00	소시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 이들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	5	0
1602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 또는 피		
1602.10.00	-균질화한 조제품	5	0
1602.20.00	-동물간의 것	5	0
1602.3	-가금류의 것(제 0105 호의 것에 한한다)		
1602.31.00	--칠면조의 것	0	0
1602.32.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에 한한다)의 것	0	0
1602.39.00	--기타	0	0
1602.4	-돼지의 것		
1602.41.00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5	0
1602.42.00	--어깨살과 그 절단육	5	0
1602.49.00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5	0
1602.50.00	-소의 것	5	0
1602.90.00	-기타(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한다)	5	0
1603.00.00	육·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0	0
16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1604.1	-어류(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에 한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1604.11.00	--연어	0	0
1604.12.00	--청어	0	0
1604.13.00	--정어리·사르디넬라 및 브리스링 또는 스프랫	0	0
1604.14.00	--다랑어·가다랑어 및 버니토우(사르다 종)	5	0
1604.15.00	--고등어	0	0
1604.16.00	--멸치	0	0
1604.17.00	--뱀장어	0	0
1604.19.00	--기타	0	0
1604.20.0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0	0
1604.3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		
1604.31.00	--캐비아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1604.32.00	--캐비아 대용물	0	0
16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 ·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1605.10.00	-게	0	0
1605.2	-새우류		
1605.21.00	--밀폐용기에 넣지 아니한 것	0	0
1605.29.00	--기타	0	0
1605.30.00	-바닷가재	0	0
1605.40.00	-기타 갑각류	0	0
1605.5	-연체동물		
1605.51.00	--굴	0	0
1605.52.00	--가리비과의 조개(여왕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0	0
1605.53.00	--홍합	0	0
1605.54.00	--갑오징어와 오징어	0	0
1605.55.00	--문어	0	0
1605.56.00	--클램, 새조개 및 피조개	0	0
1605.57.00	--전복	0	0
1605.58.00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0	0
1605.59.00	--기타	0	0
1605.6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1605.61.00	--해삼	0	0
1605.62.00	--성게	0	0
1605.63.00	--해파리	0	0
1605.69.00	--기타	0	0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상태의 것에 한한다)		
1701.1	-조당(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701.12.00	--사탕무당	0	0
1701.13.00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0	0
1701.14.00	--기타 사탕수수당	0	0
1701.9	-기타		
1701.91.00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	0	0
1701.99.00	--기타	0	0
1702	기타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 · 맥아당 · 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의 것에 한한다), 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캐러멜		
1702.1	-유당과 유당시럽		
1702.11.00	--건조상태에서 측정한 유당(무수유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 퍼센트 이상인 것	0	0
1702.19.00	--기타	0	0
1702.20.00	-단풍당과 단풍당시럽	5	0
1702.30.00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과당을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0 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0
1702.40.00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0 퍼센트 이상이고 50 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전화당은 제외한다)	4	0
1702.50.00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0	0
1702.60.00	-기타 과당과 과당시럽(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전화당은 제외한다)	5	0
1702.90	-기타[전화당 및 기타 당류와 당시럽혼합물(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 퍼센트인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1702.90.10	---다음의 물품: (가) 액상 설탕과 사탕수수나 사탕무로부터 얻은 전화당, (나) 골든 시럽	0	0
1702.90.90	---기타	5	0
1703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것에 한한다)		
1703.10.00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	0	0
1703.90.00	-기타	0	0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1704.10.00	-추잉검(당으로 도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5	0
1704.90.00	-기타	5	0
18	코코아와 그 조제품		
1801.00.00	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으로서 생 것 또는 볶은 것에 한한다)	0	0
1802.00.00	코코아의 각 · 피와 기타 코코아 웨이스트	0	0
1803	코코아 페이스트(탈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803.10.00	-탈지하지 아니한 것	0	0
1803.20.00	-전부 또는 일부 탈지한 것	0	0
1804.00.00	코코아 버터(지 및 유)	0	0
1805.00.00	코코아 분말(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0	0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		
1806.10.00	-코코아 분말(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1806.20.00	-기타 조제식료품(무게가 2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상·슬래브상 또는 바상의 것과 용기에 들거나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상·페이스트상·분말상·입상 또는 기타 벌크상의 것에 한한다)	5	0
1806.3	-기타(블록상·슬래브상 또는 바상의 것에 한한다)		
1806.31.00	--속을 채운 것	5	0
1806.32.00	--속을 채우지 아니한 것	5	0
1806.90.00	--기타	5	0
19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 생산품		
1901	맥아엑스,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40 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제 0401 호부터 제 0404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901.10.00	-유아용의 조제식료품(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0	0
1901.20.00	-제 1905 호의 베이커리제품 조제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5	0
1901.90.00	-기타	5	0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질로 속을 채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뇨끼·레비오리·카넬로니등과 같이 기타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902.1	-조리하지 아니한 파스타(속을 채우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902.11.00	--조란을 함유하는 것	5	0
1902.19.00	--기타	5	0
1902.20.0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0
1902.30.00	-기타 파스타	5	0
1902.40.00	-쿠우스쿠우스	0	0
1903.00.00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상·낟알상·진주상·무거리상 또는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에 한한다)	0	0
1904	곡물 또는 곡물생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콘플레이크), 낟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또는 기타 가공한 곡물(분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904.10.00	-곡물 또는 곡물생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	5	0
1904.20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 또는 볶지 아니한 곡물플레이크와 볶은 곡물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식료품		
1904.20.10	---무슬리 형태의 조제식료품의 것	5	0
1904.20.90	---기타	5	0
1904.30.00	-불거소맥	4	0
1904.90.00	-기타	4	0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라이스페이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905.10.00	-귀리빵	0	0
1905.20.00	-진저브레드 및 이와 유사한 것	5	0
1905.3	-스위트 비스킷, 와플과 웨이퍼		
1905.31.00	--스위트 비스킷	5	0
1905.32.00	--와플과 웨이퍼	5	0
1905.40.00	-러스크·토우스트브레드 및 이와 유사한 토우스트 물품	5	0
1905.90.00	-기타	5	0
20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2001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01.10.00	-오이류	5	0
2001.90	-기타		
2001.90.10	---양파	5	0
2001.90.90	---기타	5	0
2002	조제 또는 달리 저장처리한 토마토(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2.10.00	-전체 또는 조각상의 토마토	5	0
2002.90.00	-기타	5	0
2003	조제 또는 달리 저장처리한 버섯과 송로(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3.10.00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5	0
2003.20.00	-송로	0	0
2003.90	-기타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2008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008.1	-견과류·낙화생 및 기타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008.11.00	--낙화생(땅콩)	5	0
2008.19.00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5	0
2008.20.00	-파인애플	5	0
2008.30.00	-감귤류의 과실	0	0
2008.40.00	-배	5	0
2008.50.00	-살구	5	0
2008.60.00	-버찌	5	0
2008.70.00	-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5	0
2008.80.00	-초본류 딸기	5	0
2008.9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제 2008.19.00 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2008.91.00	--팜 하트	0	0
2008.93.00	-- 크랜베리(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 · 박시니엄 욱시코코스 · 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	5	0
2008.97.00	--혼합물	0	0
2008.99.00	--기타	5	0
2009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발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009.1	-오렌지주스		
2009.11.00	--냉동한 것	5	0
2009.12.00	--냉동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브릭스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5	0
2009.19.00	--기타	5	0
2009.2	-그레이프프루트(포멜로우를 포함한다) 주스		
2009.21.00	--브릭스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5 퍼센트 또는 킬로그램당 0.45 달러, 양자중 고액(율)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2003.90.10	---송로	0	0
2003.90.90	---기타	5	0
2004	조제 또는 달리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며, 냉동한 것에 한하고, 제 2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4.10.00	-감자	5	0
2004.90.00	-기타 채소 및 채소의 혼합물	5	0
2005	조제 또는 달리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 2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5.10.00	-균질화한 채소	5	0
2005.20.00	-감자	0	0
2005.40.00	-완두(피셈 새티범)	5	0
2005.5	-콩(비그나종·파세러스종)		
2005.51.00	--탈각한 콩	0	0
2005.59.00	--기타	5	0
2005.60.00	-아스파라거스	5	0
2005.70.00	-올리브	5	0
2005.80.0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	5	0
2005.9	-기타 채소 및 채소류의 혼합물		
2005.91.00	--죽순	5	0
2005.99.00	--기타	5	0
2006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2006.00.10	---다음의 채소: (가) 콩, (나) 올리브, (다) 스위트 콘	0	0
2006.00.20	---다음의 채소: (가) 완두콩(피셈 새티범), (나) 아스파라거스	5	0
2006.00.3	---채소, NSA 및 채소의 혼합물		
2006.00.31	----냉동한 것	0	0
2006.00.39	----기타	5	0
2006.00.90	---기타	5	0
2007	잼·과실젤리·마말레이드·과실 또는 견과류의 퓨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조리해서 얻어진 것에 한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007.10.00	-균질화한 조제품	5	0
2007.9	-기타		
2007.91.00	--감귤류의 과실	5	0
2007.99.00	--기타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2009.29.00	--기타	5 퍼센트 또는 킬로그램당 0.45 달러, 양자중 고액(율)	0
2009.3	-기타 단일의 감귤류의 주스		
2009.31	--브릭스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2009.31.10	---라임주스(설탕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	0	0
2009.31.20	---맨더린(탄제린 및 세트수머를 포함한다)주스 또는 클레멘타인·윌킹 및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의 쥬스	5	0
2009.31.90	---기타	5 퍼센트 또는 킬로그램당 0.45 달러, 양자중 고액(율)	0
2009.39	--기타		
2009.39.10	---라임주스(설탕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	0	0
2009.39.20	---맨더린(탄제린 및 세트수머를 포함한다)주스 또는 클레멘타인·윌킹 및 이와 유사한 잡종의 감귤류 주스	5	0
2009.39.90	---기타	5 퍼센트 또는 킬로그램당 0.45 달러, 양자중 고액(율)	0
2009.4	-파인애플주스		
2009.41.00	--브릭스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5	0
2009.49.00	--기타	5	0
2009.50.00	-토마토주스	5	0
2009.6	-포도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		
2009.61.00	--브릭스 값이 30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5	0
2009.69.00	--기타	5	0
2009.7	-사과주스		
2009.71.00	--브릭스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5	0
2009.79.00	--기타	5	0
2009.8	-기타 단일의 과실 또는 채소의 주스		
2009.81.00	--크랜베리(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 · 박시니엄 옥시코코스 · 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 주스	5	0
2009.89.00	--기타	5	0
2009.90.00	-혼합주스	5	0
21	각종의 조제식료품		
2101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및 이러한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품 또는 커피·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2101.1	-커피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및 이러한 엑스, 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한 조제품 또는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		
2101.11.00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0	0
2101.12.00	--엑스·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하거나 또는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	0	0
2101.20.00	-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및 이러한 엑스·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한 조제품 또는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0	0
2101.30.00	-볶은 치커리와 기타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0	0
2102	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에 한한다), 기타 단세포미생물(죽은 것에 한하며, 제 3002 호의 백신은 제외한다),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2102.10.00	-활성효모	0	0
2102.20.00	-불활성 효모, 기타 죽은 단세포 미생물	0	0
2102.30.00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0	0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분·조분과 조제한 겨자		
2103.10.00	-간장	0	0
2103.20.00	-토마토 케찹과 기타 토마토 소스	0	0
2103.30.00	-겨자의 분·조분과 조제한 겨자	0	0
2103.90.00	-기타	0	0
2104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2104.10.00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4	0
2104.20.00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4	0
2105.00.00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	0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2106.10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		
2106.10.10	---단백질 농축물	0	0
2106.10.20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	5	0
2106.90	-기타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2106.90.10	---다음의 물품: (가) 음료제조용의 알코올성 함성조제품, (나) 분 또는 조분의 조제식료품, (다) 가수분해단백질	5	0
2106.90.20	---흡연자의 금연보조용 니코틴을 함유한 정제와 추잉검 등의 구강용 조제품	0	0
2106.90.90	---기타	4	0
22	음료·알코올 및 식초		
2201	물(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얼음 및 눈		
2201.10.00	-광수와 탄산수	0	0
2201.90.00	-기타	0	0
2202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 2009 호의 과실주스 또는 채소주스는 제외한다)		
2202.10.00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5	0
2202.90.00	-기타	5	0
2203	맥주		
2203.00.20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15 퍼센트 이하인 것	0	0
2203.00.6	---이 류의 추가 주 제 9 호에 정의된 것과 같이 48 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개별용기에 포장된 기타 맥주		
2203.00.61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15 퍼센트 초과 3 퍼센트 이하인 것	0	0
2203.00.62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3 퍼센트 초과 3.5 퍼센트 이하인 것	0	0
2203.00.69	----기타	0	0
2203.00.7	---이 류의 추가 주 제 9 호에 정의된 것과 같이 48 리터를 초과하는 개별용기에 포장된 기타 맥주		
2203.00.71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15 퍼센트 초과 3 퍼센트 이하인 것	0	0
2203.00.72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3 퍼센트 초과 3.5 퍼센트 이하인 것	0	0
2203.00.79	----기타	0	0
2203.00.9	---기타		
2203.00.91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15 퍼센트 초과 10 퍼센트 이하인 것	0	0
2203.00.99	----기타	0	0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알코올로 강화시킨 포도주를 포함한다), 포도즙(제 2009 호의 것은 제외한다)		
2204.10	-발포성 포도주		
2204.10.2	---병안에서 2 차 발효에 의해서만 자연 거품이 발생한 것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2204.10.21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15 퍼센트 이하인 것	5	0
2204.10.22	----이 류의 추가 주 제 3 호에 정의된 포도주	5	0
2204.10.23	----기타(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15 퍼센트 초과 10 퍼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0
2204.10.29	----기타	5	0
2204.10.8	---기타		
2204.10.81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15 퍼센트 이하인 것	5	0
2204.10.82	----이 류의 추가 주 제 3 호에 정의된 포도주	5	0
2204.10.83	----기타(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15 퍼센트 초과 10 퍼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0
2204.10.89	----기타	5	0
2204.2	-기타 포도주, 포도즙(알코올첨가에 따라 발효가 차단 또는 중지된 것에 한한다)		
2204.21	--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2204.21.10	---다음의 물품: (가)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15 퍼센트 이하이고, (나) 음료로는 부적합한 포도즙에 해당하는 제품	5	0
2204.21.20	---이 류의 추가 주 제 3 호에 정의된 포도주	5	0
2204.21.30	---기타(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15 퍼센트 초과 10 퍼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0
2204.21.90	---기타	5	0
2204.29	--기타		
2204.29.10	---다음의 물품: (가)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15 퍼센트 이하, (나) 음료로는 부적합한 포도즙	5	0
2204.29.20	---이 류의 추가 주 제 3 호에 정의된 포도주	5	0
2204.29.30	---기타(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15 퍼센트 초과 10 퍼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0
2204.29.90	---기타	5	0
2204.30	-기타 포도즙		
2204.30.10	---이 류의 추가 주 제 3 호에 정의된 포도주	5	0
2204.30.90	---기타	5	0
2205	베르뭇 및 기타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 물질로 향미를 가한 것에 한한다)		
2205.10	-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2205.10.10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15 퍼센트 이하인 것	5	0
2205.10.20	---이 류의 추가 주 제 4 호에 정의된 포도주제품	5	0
2205.10.30	---기타(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15 퍼센트 초과 10 퍼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0
2205.10.90	---기타	5	0
2205.90	-기타		
2205.90.10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15 퍼센트 이하인 것	5	0
2205.90.20	---이 류의 추가 주 제 4 호에 정의된 포도주 물품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2206.00.4	---별도의 수입인 경우, 제 2207 호 또는 제 2208 호에 분류될 물품을 함유한 다음의 음료: (가) 이 류의 추가 주 제 3 호에 정의된 포도주(제 2204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나) 이 류의 추가 주 제 4 호에 정의된 포도주 물품(제 2205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다) 이 류의 추가 주 제 6 호에 정의된 과일주 또는 채소주, (라) 이 류의 추가 주 제 7 호에 정의된 미드		
2206.00.41	----별도의 수입인 경우, 제 2207 호에 분류될 물품을 함유한 것	5	0
2206.00.42	----별도의 수입인 경우, 제 2208 호에 분류될 물품을 함유한 것	5	0
2206.00.5	---음료, NSA(별도의 수입인 경우, 제 2207 호에 분류될 물품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2206.00.51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15 퍼센트 이하인 것	5	0
2206.00.52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15 퍼센트 초과 10 퍼센트 이하인 것	5	0
2206.00.59	----기타	5	0
2206.00.6	---음료, NSA(별도의 수입인 경우, 제 2208 호에 분류될 물품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2206.00.61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15 퍼센트 이하인 것	5	0
2206.00.62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15 퍼센트 초과 10 퍼센트 이하인 것	5	0
2206.00.69	----기타	5	0
2206.00.7	---이 류의 추가 주 제 9 호에 정의된 맥주(제 2203 호의 것은 제외하고, 48 리터 이하의 개별용기에 포장된 것에 한한다), NSA		
2206.00.71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15 퍼센트 이하인 것	0	0
2206.00.74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15 퍼센트 초과 3 퍼센트 이하인 것	0	0
2206.00.75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3 퍼센트 초과 3.5 퍼센트 이하인 것	0	0
2206.00.78	----기타	0	0
2206.00.8	---이 류의 추가 주 제 9 호에 정의된 맥주(제 2203 호의 것은 제외하고, 48 리터를 초과하는 개별용기에 포장된 것에 한한다), NSA		
2206.00.81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15 퍼센트 이하인 것	0	0
2206.00.82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15 퍼센트 초과 3 퍼센트 이하인 것	0	0
2206.00.83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3 퍼센트 초과 3.5 퍼센트 이하인 것	0	0
2206.00.89	----기타	0	0
2206.00.9	---기타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2205.90.30	---기타(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15 퍼센트 초과 10 퍼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0
2205.90.90	---기타	5	0
2206	기타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발효주의 혼합물 및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		
2206.00.1	---포도주를 기제로 하는 음료: (가) 제 2205 호 또는 제 2206.00.2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물품과, (나) 이 류의 추가 주 제 4 호가항에 언급된 향미를 함유한 것		
2206.00.13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 퍼센트 이하인 것	0	0
2206.00.14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0	0
2206.00.2	---포도주를 기제로 하는 음료: (가) 제 2205 호의 물품이 아닌 것, 그리고 (나) 이 류의 추가 주 4B 의 제 4 호나목의 적용을 받는 것, 그리고 (다) 이 류의 추가 주 제 4 호나항에 명시된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		
2206.00.21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 퍼센트 이하인 것으로서, 별도의 수입인 경우, 제 2207 호에 분류될 물품을 함유한 것	5	0
2206.00.22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수입인 경우, 제 2207 호에 분류될 물품을 함유한 것	5	0
2206.00.23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 퍼센트 이하인 것으로서, 별도의 수입인 경우, 제 2208 호에 분류될 물품을 함유한 것	5	0
2206.00.24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수입인 경우, 제 2208 호에 분류될 물품을 함유한 것	5	0
2206.00.30	---다음의 음료: (가) 이 류의 추가 주 제 3 호에 정의된 포도주(제 2204 호의 물품은 제외하고, 별도의 수입인 경우, 제 2208 호에 분류될 물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나) 이 류의 추가 주 제 4 호에 정의된 포도주물품(제 2205 호의 물품은 제외하고, 별도의 수입인 경우, 제 2207 호 또는 제 2208 호에 분류될 물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다) 이 류의 추가 주 제 5 호에 정의된 사이다 또는 페리, (라) 이 류의 추가 주 제 6 호에 정의된 과일주 또는 채소주(별도의 수입인 경우, 제 2207 호 또는 제 2208 호에 분류될 물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마) 이 류의 추가 주 제 7 호에 정의된 미드(별도의 수입인 경우, 제 2207 호 또는 제 2208 호에 분류될 물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바) 이 류의 추가 주 제 8 호에 정의된 사케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2206.00.91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15 퍼센트 이하인 것	0	0
2206.00.92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15 퍼센트 초과 10 퍼센트 이하인 것	0	0
2206.00.99	----기타	0	0
2207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80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변성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을 불문한다)		
2207.10.00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80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5	0
2207.20	-변성에틸알코올 및 기타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을 불문한다)		
2207.20.10	---내연기관 연료용 에탄올	5	0
2207.20.90	---기타	5	0
2208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80 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 증류주·리큐르 및 기타 주정음료		
2208.20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증류하여 얻은 주정		
2208.20.10	---포도주에서만 얻은 브랜디	5	0
2208.20.90	---기타	5	0
2208.30.00	-위스키류	5	0
2208.40.00	-럼 및 발효된 사탕수수물품을 증류하여 얻은 기타 주정	5	0
2208.50.00	-진 및 제네바	5	0
2208.60.00	-보드카	5	0
2208.70.00	-리큐르류 및 코디얼	5	0
2208.90	-기타		
2208.90.10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15 퍼센트 이하인 것	5	0
2208.90.20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15 퍼센트 초과 10 퍼센트 이하인 것	5	0
2208.90.90	---기타	5	0
2209.00.00	식초 및 초산에서 얻은 식초대용물	0	0
23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 조제사료		
2301	육 또는 설육·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지박		
2301.10.00	-육 또는 설육의 분·조분 및 펠리트, 수지박	0	0
2301.20.00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	0	0
2302	밀기울·미강과 기타 박류(펠리트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곡물 또는 채두류의 선별·제분 또는 기타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에 한한다)		
2302.10.00	-옥수수의 것	0	0
2302.30.00	-밀의 것	0	0
2302.40.00	-기타 곡물의 것	0	0
2302.50.00	-채두류의 것	0	0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비트펄프, 버개스 및 기타 설탕 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리트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303.10.0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0	0
2303.20.00	-비트펄프·버개스 및 기타 설탕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0	0
2303.30.00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0	0
2304.00.00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2305.00.00	낙화생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2306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 2304.00.00 호 또는 제 2305.00.00 호의 것은 제외하고 식물성 유지의 추출시에 생기는 것에 한한다)		
2306.10.00	-면실의 것	0	0
2306.20.00	-아마인의 것	0	0
2306.30.00	-해바라기씨의 것	0	0
2306.4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의 것		
2306.41.00	--저에루크산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의 것	0	0
2306.49.00	--기타	0	0
2306.50.00	-야자 또는 코프라의 것	0	0
2306.60.00	-팜넛 또는 핵의 것	0	0
2306.90.00	-기타	0	0
2307.00.00	포도주박, 생주석	0	0
2308.00.00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2309	사료용 조제품		
2309.10.00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	0	0
2309.90.00	-기타	0	0
24	담배 및 제조한 담배대용물		
2401	잎담배, 담배 부산물		
2401.10.00	-잎담배(주맥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2401.20.00	-잎담배(주맥을 일부 또는 전부 제거한 것에 한한다)	0	0
2401.30.00	-담배 부산물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2402	시가·셔루트·시가릴로 및 궐련(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에 한한다)		
2402.10	-시가·셔루트 및 시가릴로(담배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2402.10.20	---1 개피당 담배 함유량이 0.8 그램 이하인 것	0	0
2402.10.80	---기타	0	0
2402.20	-궐련(담배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2402.20.20	---1 개피당 담배 함유량이 0.8 그램 이하인 것	0	0
2402.20.80	---기타	0	0
2402.90.00	-기타	0	0
2403	기타 제조담배 및 제조한 담배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담배엑스와 에센스		
2403.1	-흡연용 담배(담배대용물의 포함비율을 불문한다)		
2403.11.00	--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에 규정된 워터파이프 담배	0	0
2403.19	--기타		
2403.19.10	---1 개피당 담배 함유량이 0.8 그램 이하인 스틱형의 것	0	0
2403.19.90	---기타	0	0
2403.9	-기타		
2403.91.00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0	0
2403.99	--기타		
2403.99.10	---담배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	0	0
2403.99.80	---기타	0	0
25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석회와 시멘트		
2501.00.00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및 순염화나트륨(수용액 여부 및 고결방지제 또는 유동제의 첨가여부를 불문한다), 해수	0	0
2502.00.00	황화철광(배소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2503.00.00	각종 황(승화황·침강황 및 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0	0
2504	천연흑연		
2504.10.00	-분상 또는 플레이크상	0	0
2504.90.00	-기타	0	0
2505	각종 천연모래(착색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 26 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는 제외한다)		
2505.10.00	-규사	0	0
2505.90.00	-기타	0	0
2506	석영(천연모래는 제외한다), 규암[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506.10.00	-석영	0	0
2506.20.00	-규암	0	0
2507.00.00	고령토와 기타 고령토질의 점토(하소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2508	기타 점토(제 6806 호의 팽창된 점토는 제외한다)·홍주석·남정석과 규선석(하소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뮬라이트, 샤모트 또는 다이나스어드		
2508.10.00	-벤토나이트	0	0
2508.30.00	-내화점토	0	0
2508.40.00	-기타 점토	0	0
2508.50.00	-홍주석·남정석 및 규선석	0	0
2508.60.00	-뮬라이트	0	0
2508.70.00	-샤모트 또는 다이나스어드	0	0
2509.00.00	초크	5	0
2510	천연인산칼슘, 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 및 인산염을 함유한 초크		
2510.10.00	-분쇄하지 아니한 것	0	0
2510.20.00	-분쇄한 것	0	0
2511	천연황산바륨(중정석), 천연탄산바륨(독중석)(하소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 2816 호의 산화바륨은 제외한다)		
2511.10.00	-천연황산바륨(중정석)	0	0
2511.20.00	-천연탄산바륨(독중석)	0	0
2512.00.00	규조토(예: 키이젤거어·트리폴라이트 및 다이아토마이트) 및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에 한한다)	0	0
2513	부석, 금강사, 천연커런덤·천연석류석과 기타 천연연마재료(열처리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513.10.00	-부석	0	0
2513.20.00	-금강사·천연커런덤·천연석류석과 기타 천연연마재료	0	0
2514.00.00	슬레이트[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0
2515	대리석·트래버틴·에코신 및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겉보기 비중이 2.5 이상인 것에 한한다)과 앨러바스터[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515.1	-대리석 및 트래버틴		
2515.11.00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5	0
2515.12.00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2515.20.00	-에코신과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 석회질의 암석, 앨러바스터	0	0
2516	화강암·반암·현무암·사암과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 암석[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516.1	-화강암		
2516.11.00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0	0
2516.12.00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	5	0
2516.20	-사암		
2516.20.10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0	0
2516.20.20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	5	0
2516.90.00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암석	0	0
2517	자갈·왕자갈·쇄석(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 또는 기타 밸러스트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싱글과 플린트(열처리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슬랙·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이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과 혼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타르매카담, 제 2515 호 또는 제 2516 호의 암석을 입상·파편상 및 분상으로 한 것(열처리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517.10.00	-자갈·왕자갈·쇄석(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 또는 기타 밸러스트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싱글과 플린트(열처리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2517.20.00	-슬랙·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소호 제 2517.10.00 호에 언급된 재료를 혼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2517.30.00	-타르매카담	0	0
2517.4	-제 2515 호 또는 제 2516 호의 암석을 입상·파편상 및 분상으로 한 것(열처리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517.41.00	--대리석의 것	0	0
2517.49.00	--기타	0	0
2518	백운석[하소 또는 소결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 응결백운석		
2518.10.00	-하소 또는 소결하지 아니한 백운석	0	0
2518.20.00	-하소 또는 소결한 백운석	0	0
2518.30.00	-응결백운석	0	0
2519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용융마그네시아, 소결한 마그네시아(소결하기 전에 첨가된 소량의 기타 산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기타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519.10.00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0	0
2519.90.00	-기타	0	0
2520	석고, 무수석고, 플라스터(하소한 석고 또는 황산칼슘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착색한 것인지 여부와 촉진제 또는 지연제를 소량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520.10.00	-석고, 무수석고	0	0
2520.20.00	-플라스터	0	0
2521.00.00	석회석용제, 석회석과 기타 석회질의 암석(석회 또는 시멘트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0	0
2522	생석회, 소석회와 수경성 석회(제 2825 호의 산화칼슘과 수산화칼슘은 제외한다)		
2522.10.00	-생석회	0	0
2522.20.00	-소석회	0	0
2522.30.00	-수경성 석회	0	0
2523	포트랜드시멘트·알루미나시멘트·슬랙시멘트·수퍼설페이트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 시멘트(착색하거나 클링커형태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523.10.00	-시멘트클링커	0	0
2523.2	-포트랜드시멘트		
2523.21.00	--백시멘트(인공적으로 착색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2523.29.00	--기타	0	0
2523.30.00	-알루미나시멘트	5	0
2523.90.00	-기타 수경성 시멘트	5	0
2524	석면		
2524.10.00	-청석면	0	0
2524.90.00	-기타	0	0
2525	운모(쪼갠 것을 포함한다), 운모 웨이스트		
2525.10.00	-조운모 및 판상 또는 쪼갠 운모	5	0
2525.20.00	-운모분	0	0
2525.30.00	-운모 웨이스트	0	0
2526	천연동석[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활석		
2526.10.00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 분상도 아닌 것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2526.20.00	-파쇄 또는 분상의 것	5	0
2528.00.00	천연붕산염과 그 정광(하소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천연염수로부터 분리한 붕산염은 제외한다), 천연붕산(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붕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0	0
2529	장석, 백류석, 하석과 하석섬장암, 형석		
2529.10.00	-장석	0	0
2529.2	-형석		
2529.21.00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7 퍼센트 이하인 것	0	0
2529.22.00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7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0	0
2529.30.00	-백류석, 하석과 하석섬장암	0	0
2530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물		
2530.10.00	-질석, 진주암과 녹니석(팽창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2530.20.00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황산마그네슘)	0	0
2530.90.00	-기타	0	0
26	광·슬랙 및 회		
2601	철광과 그 정광(배소한 황화철광은 포함한다)		
2601.1	-철광과 그 정광(배소한 황화철광은 제외한다)		
2601.11.00	--응결하지 아니한 것	0	0
2601.12.00	--응결한 것	0	0
2601.20.00	-배소한 황화철광	0	0
2602.00.00	망간광과 그 정광(건조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0 퍼센트 이상인 철 망간광과 그 정광을 포함한다)	0	0
2603.00.00	동광과 그 정광	0	0
2604.00.00	니켈광과 그 정광	0	0
2605.00.00	코발트광과 그 정광	0	0
2606.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	0	0
2607.00.00	연광과 그 정광	0	0
2608.00.00	아연광과 그 정광	0	0
2609.00.00	주석광과 그 정광	0	0
2610.0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	0	0
2611.00.00	텅스텐광과 그 정광	0	0
2612	우라늄광 또는 토륨광과 그 정광		
2612.10.00	-우라늄광과 그 정광	0	0
2612.20.00	-토륨광과 그 정광	0	0
2613	몰리브데늄광과 그 정광		
2613.10.00	-배소한 것	0	0
2613.90.00	-기타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2614.00.00	티타늄광과 그 정광	0	0
2615	니오븀광·탄탈륨광·바나듐광 또는 지르코늄광과 그들의 정광		
2615.10.0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	0	0
2615.90.00	-기타	0	0
2616	귀금속광과 그 정광		
2616.10.00	-은광과 그 정광	0	0
2616.90.00	-기타	0	0
2617	기타 광과 그 정광		
2617.10.00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	0	0
2617.90.00	-기타	0	0
2618.00.00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입상의 슬랙(슬랙샌드)	0	0
2619.00.00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슬랙·드로스(입상의 슬랙은 제외한다)·스케일링 및 기타 웨이스트	0	0
2620	슬랙, 회 및 잔재물(금속, 비소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에 한하며,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		
2620.1	-주로 아연을 함유한 것		
2620.11.00	--경아연 스펠타	0	0
2620.19.00	--기타	0	0
2620.2	-주로 연을 함유하는 것		
2620.21.00	--유연 가솔린 슬러지 및 유연 안티녹제 화합물 슬러지	0	0
2620.29.00	--기타	0	0
2620.30.00	-주로 동을 함유하는 것	0	0
2620.40.00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0	0
2620.60.00	-비소·수은·탈륨 또는 이들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의 채취용 또는 그 화학화합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0
2620.9	-기타		
2620.91.00	--안티모니·베릴륨·카드뮴·크로뮴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	0	0
2620.99.00	--기타	0	0
2621	기타 슬랙과 회[해초의 회(켈프)를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와 잔재물		
2621.10.00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와 잔재물	0	0
2621.90.00	-기타	0	0
27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2701	석탄,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마젝탄 및 이와 유사한 고형연료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2709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2709.00.10	---소비세법(1901 년) 제 4 부에 따라 부여받은 면허에 명시된 공장에서 석유정제 공급원료로 사용되는 것	0	0
2709.00.90	---기타	0	0
2710	석유와 역청유(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7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웨이스트오일		
2710.1	-석유와 역청유(원유는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7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과 웨이스트오일은 제외한다)		
2710.12	--경질석유 및 조제품		
2710.12.6	---가솔린		
2710.12.61	----항공기용 연료	0	0
2710.12.62	----가솔린과 에탄올의 혼합물	0	0
2710.12.69	----기타	0	0
2710.12.70	---기타 정제 또는 부분정제한 석유생산품 ; 미네랄 테레빈유	0	0
2710.12.90	---기타	0	0
2710.19	--기타		
2710.19.1	---톨트 또는 인리치드 크루드		
2710.19.14	----소비세법(1901 년) 제 4 부에 따라 부여받은 면허에 명시된 공장에서 석유정제 공급원료로 사용되는 것	0	0
2710.19.16	----기타	0	0
2710.19.2	---제 2710.20.00 호의 물품을 제외한 디젤유		
2710.19.22	----디젤과 에탄올의 혼합물	0	0
2710.19.28	----기타	0	0
2710.19.40	---항공기 연료용 등유	0	0
2710.19.5	---다음의 것: (가) 난방유, (나) 제 2710.19.40 호의 물품을 제외한 등유, (다) 이 류의 추가 주 제 1 호에 정의된 특성을 갖는 연료유		
2710.19.51	----난방유	0	0
2710.19.52	----제 2710.19.40 호의 물품을 제외한 등유	0	0
2710.19.53	----이 류의 추가 주 제 1 호에 정의된 특성을 갖는 연료유	0	0
2710.19.70	---기타 정제 또는 부분정제한 석유물품[윤활유(윤활유 기유를 포함한다), 유압유, 변압기유 및 역청유는 제외한다], 미네랄 테레빈유	0	0
2710.19.9	---기타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2701.1	-석탄(분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응결한 것은 제외한다)		
2701.11.00	--무연탄	0	0
2701.12.00	--유연탄	0	0
2701.19.00	--기타 석탄	0	0
2701.20.00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 · 마젝탄과 이와 유사한 고형연료	0	0
2702	갈탄(응결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흑옥은 제외한다)		
2702.10.00	-갈탄(분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응결한 것은 제외한다)	0	0
2702.20.00	-응결한 갈탄	0	0
2703.00.00	토탄(토탄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2704.00.00	코크스와 반성코크스(석탄 · 갈탄 또는 토탄으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응결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레토르트 카본	0	0
2705.00.00	석탄가스 · 수성가스 · 발생로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 및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5	0
2706.00.00	석탄 · 갈탄 또는 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기타 광물성 타르(탈수 또는 부분 증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0	0
2707	고온 콜타르의 유와 기타증류물, 이와 유사한 물품(방향족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2707.10.00	-벤조올(벤젠)	0	0
2707.20.00	-톨루올(톨루엔)	0	0
2707.30.00	-크실올(크실렌)	0	0
2707.40.00	-나프탈렌	0	0
2707.50.00	-기타 방향족 탄화수소의 혼합물[섭씨 250 도에서 에이·에스·티·엠·디(ASTM D)86 의 방법으로 증류한 양이 전용량의 65 퍼센트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인 것에 한한다]	0	0
2707.9	-기타		
2707.91.00	--크레오소트유	0	0
2707.99	--기타		
2707.99.10	---페놀(석탄산)	5	0
2707.99.90	---기타	0	0
2708	피치와 피치코크스(콜타르 또는 기타 광물성 타르에서 얻어지는 것에 한한다)		
2708.10.00	-피치	0	0
2708.20.00	-피치코크스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2710.19.91	----제 2710.19.92 호의 그리스를 제외한 석유 기유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가) 윤활유 기유, (나) 캐리어 오일(carrier oils)을 함유한 조제 윤활유 첨가제, (다) 엔진, 기어 세트, 펌프 및 베어링용 윤활유, (라) 유압유, (마) 브레이크유, (바) 트랜스미션 오일, (사) 변압유 및 열전달유	0	0
2710.19.92	----석유 기반 그리스(greases)	0	0
2710.19.99	----기타	0	0
2710.20.00	-석유와 역청유(원유는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70 퍼센트 이상이고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웨이스트오일은 제외한다)	0	0
2710.9	-웨이스트 오일		
2710.91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2710.91.1	---톱트 또는 인리치드 크루드		
2710.91.14	----소비세법(1901 년) 제 4 부에 따라 부여받은 면허에 명시된 공장에서 석유정제 공급원료로 사용되는 것	0	0
2710.91.16	----기타	0	0
2710.91.2	---제 2710.91.80 호의 혼합물은 제외한 디젤유		
2710.91.22	----디젤과 에탄올의 혼합물	0	0
2710.91.28	----기타	0	0
2710.91.40	---항공기 연료용 등유	0	0
2710.91.5	---다음의 물품: (가) 난방유, (나) 제 2710.91.40 호의 물품은 제외한 등유, (다) 이 류의 추가 주 제 1 호에 정의된 특성을 갖는 연료유		
2710.91.51	----난방유	0	0
2710.91.52	----제 2710.91.40 호의 물품은 제외한 등유	0	0
2710.91.53	----이 류의 추가 주 제 1 호에 정의된 특성을 갖는 연료유	0	0
2710.91.6	---가솔린		
2710.91.61	----항공기용 연료	0	0
2710.91.62	----가솔린과 에탄올의 혼합물	0	0
2710.91.69	----기타	0	0
2710.91.70	---기타 정제 또는 부분정제한 석유물품[윤활유(윤활유 기유를 포함한다), 유압유, 변압기유 및 역청유는 제외한다], 미네랄 테레빈유	0	0
2710.91.80	---바이오디젤과 기타 물질의 혼합물	0	0
2710.91.9	---기타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2710.91.91	----제 2710.91.92 호의 그리스(greases)는 제외한 석유 기유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가) 윤활유 기유, (나) 캐리어 오일(carrier oils)을 함유한 조제 윤활유 첨가제, (다) 엔진, 기어 세트, 펌프 및 베어링용 윤활유, (라) 유압유, (마) 브레이크유, (바) 트랜스미션 오일, (사) 변압유 및 열전달유	0	0
2710.91.92	----석유 기반 그리스(greases)	0	0
2710.91.99	----기타	0	0
2710.99	--기타		
2710.99.1	---톱트 또는 인리치드 크루드		
2710.99.14	----소비세법(1901 년) 제 4 부에 따라 부여받은 면허에 명시된 공장에서 석유정제 공급원료로 사용되는 것	0	0
2710.99.16	----기타	0	0
2710.99.2	---제 2710.99.80 호의 혼합물은 제외한 디젤유		
2710.99.22	----디젤과 에탄올의 혼합물	0	0
2710.99.28	----기타	0	0
2710.99.40	---항공기 연료용 등유	0	0
2710.99.5	---다음의 물품: (가) 난방유, (나) 제 2710.99.40 호의 물품은 제외한 등유, (다) 이 류의 추가 주 제 1 호에 정의된 특성을 갖는 연료유		
2710.99.51	----난방유	0	0
2710.99.52	----제 2710.99.40 호의 물품은 제외한 등유	0	0
2710.99.53	----이 류의 추가 주 제 1 호에 정의된 특성을 갖는 연료유	0	0
2710.99.6	---가솔린		
2710.99.61	----항공기용 연료	0	0
2710.99.62	----가솔린과 에탄올의 혼합물	0	0
2710.99.69	----기타	0	0
2710.99.70	---기타 정제 또는 부분정제한 석유물품[윤활유(윤활유 기유를 포함한다), 유압유, 변압기유 및 역청유는 제외한다], 미네랄 테레빈유	0	0
2710.99.80	---바이오디젤과 기타 물질의 혼합물	0	0
2710.99.9	---기타		
2710.99.91	----제 2710.99.92 호의 그리스(greases)는 제외한 석유 기유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가) 윤활유 기유, (나) 캐리어 오일(carrier oils)을 함유한 조제 윤활유 첨가제, (다) 엔진, 기어 세트, 펌프 및 베어링용 윤활유, (라) 유압유, (마) 브레이크유, (바) 트랜스미션 오일, (사) 변압유 및 열전달유	0	0
2710.99.92	----석유 기반 그리스(greases)	0	0
2710.99.99	----기타	0	0
2711	석유가스와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		
2711.1	-액화한 것		
2711.11.00	--천연가스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2711.12	--프로판		
2711.12.10	---이 류의 추가 주 제 2 호에 정의된 엘피지(LPG)	0	0
2711.12.90	---기타	0	0
2711.13	--부탄		
2711.13.10	---이 류의 추가 주 제 2 호에 정의된 엘피지(LPG)	0	0
2711.13.90	---기타	0	0
2711.14.00	--에틸렌·프로필렌·부틸렌 및 부타디엔	0	0
2711.19.00	--기타	0	0
2711.2	-가스상의 것		
2711.21	--천연가스		
2711.21.10	---이 류의 추가 주 제 5 호에 정의된 씨엔지(CNG)	0	0
2711.21.90	---기타	0	0
2711.29.00	--기타	0	0
2712	석유젤리, 파라핀왁스·마이크로크리스털린석유왁스·슬랙왁스·오우조커라이트·갈탄왁스·토탄왁스·기타 광물성왁스 및 합성 또는 기타 공정에 따라 얻어지는 이와 유사한 물품(착색 여부를 불문한다)		
2712.10.00	-석유젤리	0	0
2712.20.00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75 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	0	0
2712.90.00	-기타	0	0
2713	석유코크스·석유아스팔트 및 기타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재물		
2713.1	-석유코크스		
2713.11.00	--하소하지 아니한 것	0	0
2713.12.00	--하소한 것	0	0
2713.20.00	-석유아스팔트	0	0
2713.90.00	-기타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재물	0	0
2714	천연의 역청 및 아스팔트, 역청질혈암 또는 유모혈암 및 타르샌드, 아스팔타이트와 아스팔트질의 암석		
2714.10.00	-역청질혈암 또는 유모혈암 및 타르샌드	0	0
2714.90.00	-기타	0	0
2715.00.00	역청질혼합물[천연아스팔트·천연역청·석유아스팔트·광물성 타르 또는 광물성 타르피치를 기제로 한 것에 한한다(예: 역청질매스틱 및 컷백)]	5	0
28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2801	플루오르·염소·브롬 및 요드		
2801.10.00	-염소	0	0
2801.20.00	-요드	0	0
2801.30.00	-플루오르, 브롬	0	0
2802.00.00	승화황 또는 침강황, 콜로이드황	0	0
2803.00.00	탄소(카본블랙과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0	0
2804	수소·희(稀)가스 및 기타 비(非)금속원소		
2804.10.00	-수소	0	0
2804.2	-희가스		
2804.21.00	--아르곤	0	0
2804.29.00	--기타	0	0
2804.30.00	-질소	0	0
2804.40.00	-산소	0	0
2804.50.00	-붕소, 텔루르	0	0
2804.6	-규소		
2804.61.00	--규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 퍼센트 이상인 것	0	0
2804.69.00	--기타	0	0
2804.70.00	-인	0	0
2804.80.00	-비소	0	0
2804.90.00	-셀레늄	0	0
2805	알칼리금속 또는 알칼리토류금속, 희토류금속·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되거나 상호 합금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수은		
2805.1	-알칼리 또는 알칼리토류 금속		
2805.11.00	--나트륨	0	0
2805.12.00	--칼슘	0	0
2805.19.00	--기타	0	0
2805.30.00	-희토류금속·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되거나 상호 합금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2805.40.00	-수은	0	0
2806	염화수소(염산), 클로로황산		
2806.10.00	-염화수소(염산)	0	0
2806.20.00	-클로로황산	0	0
2807.00.00	황산, 발연황산	0	0
2808.00.00	질산, 황질산	0	0
2809	오산화인, 인산, 폴리인산(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809.10.00	-오산화인	0	0
2809.20	-인산과 폴리인산		
2809.20.10	---다음을 함유한 인산: (가) 철, 알루미늄 및 마그네슘의 총량이 0.45 퍼센트 이상이고, (나) 오르토인산이 전중량의 75 퍼센트인 산을 기제로 한 황산을 0.5 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2809.20.90	---기타	5	0
2810.00.00	붕소의 산화물, 붕산	0	0
2811	기타 무기산과 기타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2811.1	-기타 무기산		
2811.11.00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르화수소산)	0	0
2811.19.00	--기타	0	0
2811.2	-기타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2811.21.00	--이산화탄소	0	0
2811.22.00	--이산화규소	0	0
2811.29.00	--기타	0	0
2812	비(非)금속의 할로겐화물과 산화할로겐화물		
2812.10.00	-염화물과 산화염화물	0	0
2812.90.00	-기타	0	0
2813	비(非)금속의 황화물, 상관습상의 삼황화인		
2813.10.00	-이황화탄소	0	0
2813.90.00	-기타	0	0
2814	무수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2814.10.00	-무수암모니아	0	0
2814.20.00	-암모니아수	0	0
2815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수산화칼륨(가성칼륨), 과산화나트륨 또는 과산화칼륨		
2815.1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2815.11.00	--고체의 것	0	0
2815.12.00	--수용액의 것(소다액 또는 액상소다)	0	0
2815.20.00	-수산화칼륨(가성칼륨)	0	0
2815.30.00	-과산화나트륨 또는 과산화칼륨	0	0
2816	수산화마그네슘·과산화마그네슘, 스트론튬 또는 바륨의 산화물·수산화물 및 과산화물		
2816.10.00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0	0
2816.40.00	-스트론튬 또는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과산화물	0	0
2817.00.00	산화아연, 과산화아연	0	0
2818	인조커런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2818.10	-인조커런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818.10.10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0	0
2818.10.90	---기타	5	0
2818.20.00	-산화알루미늄(인조커런덤은 제외한다)	0	0
2818.30.00	-수산화알루미늄	0	0
2819	산화크로뮴과 수산화크로뮴		
2819.10.00	-삼산화크로뮴	0	0
2819.90.00	-기타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2820	산화망간		
2820.10.00	-이산화망간	0	0
2820.90.00	-기타	0	0
2821	산화철 및 수산화철, 어드컬러(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산화제 2 철(FE2O3)로서 계산하여 전중량의 70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2821.10.00	-산화철과 수산화철	0	0
2821.20.00	-어드컬러	0	0
2822.00.00	산화코발트와 수산화코발트, 상관습상의 산화코발트	0	0
2823.00.00	산화티타늄	0	0
2824	산화연, 연단 및 오렌지연		
2824.10.00	-일산화연(리타지·메시코트)	0	0
2824.90.00	-기타	0	0
2825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 및 그들의 무기염, 기타 무기염기, 기타 금속산화물·금속수산화물 및 금속과산화물		
2825.10.00	-히드라진과 히드록실아민 및 그들의 무기염	0	0
2825.20.00	-산화리튬 및 수산화리튬	0	0
2825.30.00	-산화바나듐 및 수산화바나듐	0	0
2825.40.00	-산화니켈 및 수산화니켈	0	0
2825.50.00	-산화동 및 수산화동	0	0
2825.60.00	-산화게르마늄 및 이산화지르코늄	0	0
2825.70.00	-산화몰리브덴 및 수산화몰리브덴	0	0
2825.80.00	-산화안티몬	0	0
2825.90.00	-기타	0	0
2826	플루오르화물, 플루오르화규산염·플로오르화알루미늄산염 및 기타 플루오르착염		
2826.1	-플루오르화물		
2826.12.00	--플루오르화알루미늄	0	0
2826.19.00	--기타	0	0
2826.30.00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빙정석)	0	0
2826.90.00	-기타	0	0
2827	염화물·산화염화물 및 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 및 산화브롬화물, 요드화물 및 산화요드화물		
2827.10.00	-염화암모늄	0	0
2827.20.00	-염화칼슘	0	0
2827.3	-기타 염화물		
2827.31.00	--마그네슘의 것	0	0
2827.32.00	--알루미늄의 것	0	0
2827.35.00	--니켈의 것	0	0
2827.39.00	--기타	0	0
2827.4	-산화염화물 및 수산화염화물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2827.41.00	--동의 것	0	0
2827.49.00	--기타	0	0
2827.5	-브롬화물 및 산화브롬화물		
2827.51.00	--브롬화나트륨 또는 브롬화칼륨	0	0
2827.59.00	--기타	0	0
2827.60.00	-요드화합물과 산화요드화물	0	0
2828	하이포아염소산염, 상관습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염소산염 및 하이포아브롬산염		
2828.10.00	-상관습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기타 하이포아염소산칼슘	0	0
2828.90.00	-기타	0	0
2829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 브롬산염과 과브롬산염, 요드산염과 과요드산염		
2829.1	-염소산염		
2829.11.00	--염소산나트륨	0	0
2829.19.00	--기타	0	0
2829.90.00	-기타	0	0
2830	황화물, 폴리황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830.10.00	-황화나트륨	0	0
2830.90.00	-기타	0	0
2831	아이티온산염과 솔폭실산염		
2831.10.00	-나트륨의 것	0	0
2831.90.00	-기타	0	0
2832	아황산염, 티오황산염		
2832.10.00	-아황산나트륨	0	0
2832.20.00	-기타 아황산염	0	0
2832.30.00	-티오황산염	0	0
2833	황산염, 명반,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2833.1	-황산나트륨		
2833.11.00	--황산이나트륨	5	0
2833.19.00	--기타	0	0
2833.2	-기타 황산염		
2833.21.00	--마그네슘의 것	5	0
2833.22.00	--알루미늄의 것	5	0
2833.24.00	--니켈의 것	0	0
2833.25.00	--동의 것	5	0
2833.27.00	--바륨의 것	0	0
2833.29	--기타		
2833.29.10	---아연의 것	5	0
2833.29.90	---기타	0	0
2833.30.00	-명반	0	0
2833.40.00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0	0
2834	아질산염, 질산염		
2834.10.00	-아질산염	0	0
2834.2	-질산염		
2834.21.00	--칼륨의 것	0	0
2834.29.00	--기타	0	0
2835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835.10.00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 및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0	0
2835.2	-인산염		
2835.22.00	--일나트륨 또는 이나트륨의 것	5	0
2835.24.00	--칼륨의 것	0	0
2835.25.00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0	0
2835.26.00	--기타 인산칼슘	5	0
2835.29.00	--기타	0	0
2835.3	-폴리인산염		
2835.31.00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5	0
2835.39	--기타		
2835.39.10	---나트륨의 것(피로인산과 메타 인산염을 포함한다)	5	0
2835.39.90	---기타	0	0
2836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밤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2836.20.00	-탄산이나트륨	5	0
2836.30.00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0	0
2836.40.00	-탄산칼륨	0	0
2836.50.00	-탄산칼슘	0	0
2836.60.00	-탄산바륨	0	0
2836.9	-기타		
2836.91.00	--탄산리튬	0	0
2836.92.00	--탄산스트론튬	0	0
2836.99.00	--기타	0	0
2837	시안화물・산화시안화물과 시안착염		
2837.1	-시안화물과 산화시안화물		
2837.11.00	--나트륨의 것	0	0
2837.19.00	--기타	0	0
2837.20.00	-시안착염	0	0
2839	규산염, 상관습상의 알칼리금속의 규산염		
2839.1	-규산나트륨		
2839.11.00	--메타규산나트륨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2844	방사성화학원소 및 방사성동위원소(핵분열성 또는 연료핵친원소와 동위원소를 포함한다)와 그들의 화합물, 이들의 물품을 함유한 혼합물 및 잔재물		
2844.10.00	-천연우라늄 및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물(천연우라늄 또는 천연우라늄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0	0
2844.20.00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 및 그 화합물,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플루토늄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0	0
2844.30.00	-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 및 그 화합물, 토륨 및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토륨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0	0
2844.40.00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 및 제 2844.10.00 호·제 2844.20.00 호 또는 제 2844.30.00 호의 것은 제외한 화합물, 합금·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 및 이러한 원소, 동위원소 또는 화합물을 함유한 혼합물, 방사성 잔재물	0	0
2844.50.00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된 연료체(카트리지)	0	0
2845	동위원소(제 2844 호의 것은 제외한다), 그 동위원소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845.10.00	-중수(산화 중수소)	0	0
2845.90.00	-기타	0	0
2846	희토류금속·이트륨·스칸듐 또는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		
2846.10.00	-세륨화합물	0	0
2846.90.00	-기타	0	0
2847.00.00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0
2848.00.00	인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인철은 제외한다)	0	0
2849	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849.10.00	-칼슘의 것	0	0
2849.20.00	-규소의 것	0	0
2849.90.00	-기타	0	0
2850.00.00	수소화물·질화물·아지드화물·규화물 및 붕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 2849 호의 탄화물은 제외한다)	0	0
2852	무기 또는 유기의 수은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아말감은 제외한다)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2839.19.00	--기타	0	0
2839.90.00	-기타	0	0
2840	붕산염,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2840.1	-사붕산이나트륨(정제붕사)		
2840.11.00	--무수물	0	0
2840.19.00	--기타	0	0
2840.20.00	-기타 붕산염	0	0
2840.30.00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5	0
2841	산화금속산염 또는 과산화금속산염		
2841.30.00	-중크롬산나트륨	0	0
2841.50	-기타 크롬산염과 중크롬산염, 과산화크롬산염		
2841.50.20	---다음의 물품: (가) 아연 또는 납의 크롬산염, (나) 중크롬산칼륨	0	0
2841.50.90	---기타	5	0
2841.6	-아망간산염과 망간산염 및 과망간산염		
2841.61.00	--과망간산칼륨	0	0
2841.69.00	--기타	0	0
2841.70.00	-몰리브덴산염	0	0
2841.80.00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	0	0
2841.90	-기타		
2841.90.10	---알루미늄산염	5	0
2841.90.90	---기타	0	0
2842	기타 무기산염 또는 과산화산염(아지화물은 제외하며,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2842.10	-규산의 겹염 또는 착염(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하며,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842.10.10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아니한 알루미노실리케이트	5	0
2842.10.90	---기타	0	0
2842.90.00	-기타	0	0
2843	콜로이드 귀금속, 귀금속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귀금속의 아말감		
2843.10.00	-콜로이드 귀금속	0	0
2843.2	-은 화합물		
2843.21.00	--질산은	0	0
2843.29.00	--기타	0	0
2843.30.00	-금 화합물	0	0
2843.90.00	-기타 화합물, 아말감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2852.10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2852.10.10	---다음의 수은 화합물: (가) 알루미늄산염, (나) 크롬산염·중크롬산염 또는 과산화산염, (다) 제 2931.90.10 호의 물품, (라) 제 2937.50.10 호의 물품, (마)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바) 제 2915.70.00 호, 제 2915.90.00 호, 제 2916.15.00 호, 제 2916.19.10 호 또는 제 2918.9 호의 카르복시산염, (사) 제 2917.3 호의 카르복시산의 염과 유도체(테레프탈산염을 제외한다), (아) 플루오르기·니트로기·프로필기를 함유하는 톨루이딘유도체, (자)사진용의 단일물품(일정량으로 소분하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	5	0
2852.10.20	---다음의 수은 화합물: (가) 제 2921.1 호의 비환식폴리아민염과 유도체, (나) 아세트산염, (다) 트리에탄올아민염	5	0
2852.10.90	---기타	0	0
2852.90	-기타		
2852.90.10	---다음의 수은 화합물: (가) 다황화물, (나) 중합인산염, (다) 인화물, (라) 탄화물, (마)수소화물, (바) 아지드화물, (사) 질화물, (아) 규소화물, (자) 붕소화물, (차) 핵산염, (카) 나프텐산의 수용성염, (타) 타닌산염과 기타 탄닌 유도체, (파) 카제네이트와 기타 카제인 유도체, (하) 알부미네이트와 기타 알부민 유도체, (카) 펩토네이트, 펩톤 유도체와 기타 단백질 물질	0	0
2852.90.90	---기타(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5	0
2853.00.00	기타 무기화합물(증류수 또는 전도도수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한다), 액체공기(희가스가 제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압축공기, 아말감(귀금속의 아말감을 제외한다)	0	0
29	유기화학물		
2901	비환식탄화수소		
2901.10.00	-포화된 것	0	0
2901.2	-불포화된 것		
2901.21.00	--에틸렌	0	0
2901.22.00	--프로펜(프로필렌)	0	0
2901.23.00	--부텐(부틸렌) 및 그 이성체	0	0
2901.24.00	--1,3-부타디엔 및 이소프렌	0	0
2901.29.00	--기타	0	0
2902	환식탄화수소		
2902.1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및 시클로테르펜		
2902.11.00	--시클로헥산	0	0
2902.19.00	--기타	0	0
2902.20.00	-벤젠	0	0
2902.30.00	-톨루엔	0	0
2902.4	-크실렌		
2902.41.00	--오르토-크실렌	0	0
2902.42.00	--메타-크실렌	0	0
2902.43.00	--파라-크실렌	0	0
2902.44.00	--혼합크실렌이성체	0	0
2902.50.00	-스티렌	5	0
2902.60.00	-에틸벤젠	0	0
2902.70.00	-큐멘	0	0
2902.90.00	-기타	0	0
2903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2903.1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소화유도체		
2903.11.00	--염화메탄(염화메틸) 및 염화에탄(염화에틸)	0	0
2903.12.00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0	0
2903.13.00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0	0
2903.14.00	--사염화탄소	0	0
2903.15.00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0	0
2903.19.00	--기타	0	0
2903.2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소화유도체		
2903.21.00	--염화비닐(염화에틸렌)	0	0
2903.22.00	--삼염화에틸렌	0	0
2903.23.00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0	0
2903.29.00	--기타	0	0
2903.3	-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브롬화 또는 요드화유도체		
2903.31.00	--이브롬화에틸렌(ISO)(1,2-디브로모에탄)	0	0
2903.39.00	--기타	0	0
2903.7	-비환식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서로 다른 2종 이상의 할로겐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		
2903.71.00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5	0
2903.72.00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5	0
2903.73.00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	5	0
2903.74.00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5	0
2903.75.00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5	0
2903.76.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및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	0	0
2903.77.00	--기타(불소 및 염소만으로 퍼할로겐화한 것)	0	0
2903.78.00	--기타 퍼할로겐화유도체	0	0
2903.79	--기타		
2903.79.10	---기타 염소불화유도체	5	0
2903.79.90	---기타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2903.8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2903.81.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한다]	0	0
2903.82.00	--앨드린(ISO), 클로르덴(ISO) 및 헵타클로르(ISO)	0	0
2903.89.00	--기타	0	0
2903.9	-방향족 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2903.91.00	--클로로벤젠·오르토-디클로로벤젠 및 파라-디클로로벤젠	5	0
2903.92.00	--헥사클로로벤젠(ISO) 및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0	0
2903.99.00	--기타	0	0
2904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 여부를 불문한다)		
2904.10.00	-술폰화유도체와 그들의 염 및 에틸에스테르	0	0
2904.20.00	-니트로 또는 니트로소화 유도체	0	0
2904.90.00	-기타	0	0
2905	비환식알코올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5.1	-포화 1가알코올		
2905.11.00	--메탄올(메틸알코올)	0	0
2905.12.00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과 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0	0
2905.13.00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5	0
2905.14.00	--기타 부탄올	0	0
2905.16.00	--옥탄올(옥틸알코올)과 그 이성체	5	0
2905.17.00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및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0	0
2905.19	--기타		
2905.19.10	---다음의 물품: (가) 4-메틸펜탄-2-올, (나) 탄소 원자 6개 이상을 함유한 제1차 알코올	5	0
2905.19.90	---기타	0	0
2905.2	-불포화 1가알코올		
2905.22.00	--비환식테르펜알코올	0	0
2905.29.00	--기타	0	0
2905.3	-2가알코올		
2905.31.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5	0
2905.32.00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5	0
2905.39.00	--기타	0	0
2905.4	-기타 다가알코올		
2905.41.00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0	0
2905.42.00	--펜타에리트리톨	0	0
2905.43.00	--만니톨	0	0
2905.44.00	--디-글루시톨(소르비톨)	5	0
2905.45.00	--글리세롤	5	0
2905.49.00	--기타	0	0
2905.5	-비환식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5.51.00	--에스클로비놀(INN)	0	0
2905.59.00	--기타	0	0
2906	환식알코올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6.1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		
2906.11.00	--멘톨	0	0
2906.12.00	--시클로헥산올, 메틸시클로헥산올 및 디메틸시클로헥산올	0	0
2906.13.00	--스테롤과 이노시톨	0	0
2906.19.00	--기타	0	0
2906.2	-방향족		
2906.21.00	--벤질알코올	0	0
2906.29.00	--기타	0	0
2907	페놀, 페놀알코올		
2907.1	-1가페놀		
2907.11.00	--페놀(석탄산)과 그 염	5	0
2907.12.00	--크레졸과 그들의 염	0	0
2907.13.00	--옥틸페놀·노닐페놀과 그들의 이성체, 그들의 염	0	0
2907.15.00	--나프톨과 그들의 염	0	0
2907.19.00	--기타	0	0
2907.2	-다가페놀, 페놀알코올		
2907.21.00	--레소르시놀과 그 염	0	0
2907.22.00	--히드로퀴논(퀴놀)과 그 염	0	0
2907.23.00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디페닐올프로판)과 그 염	0	0
2907.29.00	--기타	0	0
2908	페놀 또는 페놀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8.1	-할로겐화유도체와 그들의 염		
2908.11.00	--펜타클로로페놀(ISO)	0	0
2908.19.00	--기타	0	0
2908.9	-기타		
2908.91.00	--디노셉(ISO)과 그 염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2910	3 원고리의 에폭시드 · 에폭시알코올 · 에폭시페놀 및 에폭시에테르와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0.10.00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0	0
2910.20.00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0	0
2910.30.00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0	0
2910.40.00	-디엘드린(ISO, INN)	0	0
2910.90.00	-기타	0	0
2911.00.00	아세탈 및 헤미아세탈(기타 산소관능 결합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0	0
2912	알데히드(기타 산소관능 결합 여부를 불문한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파라포름알데히드		
2912.1	-비환식알데히드(기타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912.11.00	--메탄알(포름알데히드)	5	0
2912.12.00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5	0
2912.19.00	--기타	0	0
2912.2	-환식알데히드(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912.21.00	--벤즈알데히드	0	0
2912.29.00	--기타	0	0
2912.4	-알데히드-알코올 · 알데히드-에테르 · 알데히드-페놀과 기타 산소관능의 알데히드		
2912.41.00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0	0
2912.42.00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0	0
2912.49.00	--기타	0	0
2912.50.00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0	0
2912.60.00	-파라포름알데히드	5	0
2913.00.00	제 2912 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0	0
2914	케톤 및 퀴논(기타 산소관능 결합 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4.1	-비환식케톤(기타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914.11.00	--아세톤	5	0
2914.12.00	--부탄온(메틸에틸케톤)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2908.92.00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NOC(ISO)] 및 그 염	0	0
2908.99.00	--기타	0	0
2909	에테르 · 에테르알코올 · 에테르페놀 · 에테르알코올페놀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1	-비환식에테르와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11.00	--디에틸에테르	0	0
2909.19.00	--기타	0	0
2909.20.00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에테르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0	0
2909.30.00	-방향족에테르와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0	0
2909.4	-에테르 알코올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41.00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5	0
2909.43.00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5	0
2909.44.00	--에틸렌글리콜의 기타 모노알킬에테르 또는 디에틸렌글리콜의 기타 모노알킬에테르	5	0
2909.49.00	--기타	5	0
2909.50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 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50.10	---산화 에틸렌 유도체	5	0
2909.50.90	---기타	0	0
2909.60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케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60.10	---다음의 물품: (가) 산화 에틸렌 유도체, (나) 디-티-부틸 과산화물, (다) 에틸메틸케톤퍼록사이드, (라) 티-부틸 히드로퍼록사이드	5	0
2909.60.90	---기타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2915.40.00	-모노클로로 아세트산 · 디클로로 아세트산 또는 트리클로로 아세트산과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0	0
2915.50.00	-프로피온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0	0
2915.60.00	-부탄산 · 펜탄산과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0	0
2915.70.00	-팔미트산 · 스테아르산과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5	0
2915.90.00	-기타	5	0
2916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 환식모노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6.1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2916.11.00	--아크릴산과 그 염	0	0
2916.12.00	--아크릴산의 에스테르	0	0
2916.13.00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	0	0
2916.14.00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0	0
2916.15.00	--올레산 · 리놀레산 또는 리놀렌산과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5	0
2916.16.00	--비나파크릴(ISO)	0	0
2916.19	--기타		
2916.19.10	---탄소원자가 8 개 이상이고 22 개 이하인 산과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5	0
2916.19.90	---기타	0	0
2916.20.00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0	0
2916.3	-방향족 모노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2916.31.00	--벤조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0	0
2916.32.00	--과산화벤조일과 염화벤조일	0	0
2916.34.00	--페닐아세트산 및 그 염	0	0
2916.39.00	--기타	0	0
2917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및 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토로소화유도체		
2917.1	-비환식폴리카르복시산 ·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2917.11.00	--옥살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0	0
2917.12.00	--아디프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0	0
2917.13.00	--아젤라산 · 세바스산과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2914.13.00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0	0
2914.19.00	--기타	0	0
2914.2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케톤(기타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914.22.00	--시클로헥사논과 메틸시클로헥사논	0	0
2914.23.00	--이오논과 메틸이오논	0	0
2914.29.00	--기타	0	0
2914.3	-방향족 케톤(기타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914.31.00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0	0
2914.39.00	--기타	0	0
2914.40	-케톤-알코올과 케톤-알데히드		
2914.40.10	---디아세톤 알코올(4-히드록시-4-메틸펜탄-2-온)	5	0
2914.40.90	---기타	0	0
2914.50.00	-케톤-페놀과 기타 산소관능의 케톤	0	0
2914.6	-퀴논		
2914.61.00	--안트라퀴논	0	0
2914.69.00	--기타	0	0
2914.70.00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0	0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및 과산화산,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5.1	-포름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2915.11.00	--포름산	0	0
2915.12.00	--포름산의 염	0	0
2915.13.00	--포름산의 에스테르	5	0
2915.2	-초산과 그 염, 무수초산		
2915.21.00	--초산	5	0
2915.24.00	--무수초산	5	0
2915.29.00	--기타	5	0
2915.3	-초산에스테르		
2915.31.00	--초산에틸	5	0
2915.32.00	--초산비닐	5	0
2915.33.00	--초산노르말부틸	5	0
2915.36.00	--초산디노셉(ISO)	5	0
2915.39	--기타		
2915.39.10	---글리세롤 트리아세테이트	0	0
2915.39.20	---초산 2-에톡시에틸	5	0
2915.39.90	---기타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2918.91.00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 염 및 에스테르	5	0
2918.99.00	--기타	5	0
2919	인산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9.1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0	0
2919.90.00	-기타	0	0
2920	기타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를 제외한다) 및 그들의 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20.1	-티오인산에스테르(포스포로티오에이트) 및 그들의 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20.11.00	--파라티온(ISO) 및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0	0
2920.19.00	--기타	0	0
2920.90.00	-기타	0	0
2921	아민관능화합물		
2921.1	-비환식모노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2921.11.00	--메틸아민·디메틸아민 또는 트리메틸아민과 그들의 염	5	0
2921.19.00	--기타	5	0
2921.2	-비환식폴리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2921.21.00	--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0	0
2921.22.00	--헥사메틸렌디아민과 그 염	0	0
2921.29.00	--기타	0	0
2921.30.00	-포화지환식아민, 불포화지환식아민 또는 시클로테르펜 모노아민 또는 폴리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0	0
2921.4	-방향족 모노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2921.41.00	--아닐린과 그 염	0	0
2921.42.00	--아닐린유도체와 그들의 염	0	0
2921.43	--톨루이딘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2921.43.10	---플루오르기, 니트로기 및 프로필기를 함유하는 톨루이딘 유도체	5	0
2921.43.90	---기타	0	0
2921.44.00	--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그들의 염	0	0
2921.45.00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 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2917.14.00	--무수말레산	0	0
2917.19.00	--기타	0	0
2917.20.0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0	0
2917.3	-방향족 폴리카르복시산·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2917.32.00	--오르토프탈산디옥틸	5	0
2917.33.00	--오르토프탈산디노닐 또는 오르토프탈산디데실	5	0
2917.34.00	--기타 오르토프탈산의 에스테르	0	0
2917.35.00	--무수프탈산	5	0
2917.36.00	--테레프탈산과 그 염	0	0
2917.37.00	--테레프탈산디메틸	0	0
2917.39.00	--기타	5	0
2918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8.1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기타 산소관능을 가지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2918.11.00	--락트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0	0
2918.12.00	--타르타르산	0	0
2918.13.00	--타르타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0	0
2918.14.00	--시트르산	0	0
2918.15.00	--시트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0	0
2918.16.00	--글루콘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0	0
2918.18.00	--클로로벤질레이트(ISO)	0	0
2918.19.00	--기타	0	0
2918.2	-페놀관능기의 카르복시산(기타 산소관능을 가지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2918.21.00	--살리실산과 그 염	0	0
2918.22.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0	0
2918.23.00	--기타 살리실산의 에스테르와 그들의 염	0	0
2918.29.00	--기타	0	0
2918.30.00	-알데히드 또는 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기타 산소관능을 가지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0	0
2918.9	-기타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2921.46.00	--암페타민(INN), 벤즈페타민(INN), 덱스암페타민(INN), 에틸암페타민(INN), 펜캄파민(INN), 레페타민(INN), 레브암페타민(INN), 메페노렉스(INN) 및 펜터민(INN), 그들의 염	0	0
2921.49.00	--기타	0	0
2921.5	-방향족 폴리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2921.51.00	--오르토-페닐렌디아민 · 메타-페닐렌디아민 · 파라-페닐렌디아민 · 디아미노톨루엔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0	0
2921.59.00	--기타	0	0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2922.1	-아미노알코올(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 그들의 에테르와 에스테르, 그들의 염		
2922.11.00	--모노에탄올아민과 그 염	0	0
2922.12.00	--디에탄올아민과 그 염	0	0
2922.13.00	--트리에탄올아민과 그 염	5	0
2922.14.00	--덱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0	0
2922.19.00	--기타	0	0
2922.2	-아미노나프톨 및 기타 아미노페놀(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 그들의 에테르 및 에스테르, 그들의 염		
2922.21.00	--아미노히드록시 나프탈렌술폰산과 그들의 염	0	0
2922.29.00	--기타	0	0
2922.3	-아미노-알데히드 · 아미노-케톤과 아미노-퀴논(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 그들의 염		
2922.31.00	-암페프라몬(INN), 메타돈(INN) 및 노르메타돈(INN), 그들의 염	0	0
2922.39.00	--기타	0	0
2922.4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과 그 에스테르, 그들의 염		
2922.41.00	--리신과 그 에스테르, 그들의 염	0	0
2922.42.00	--글루탐산과 그 염	0	0
2922.43.00	--안트라닐산과 그 염	0	0
2922.44.00	--틸리딘(INN)과 그 염	0	0
2922.49.00	--기타	0	0
2922.50.00	-아미노-알코올페놀 · 아미노산페놀과 기타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0	0
2923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기타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923.10.00	-콜린과 그 염	0	0
2923.20.00	-레시틴과 기타 포스포아미노리피드	0	0
2923.90.00	-기타	0	0
2924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2924.1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2924.11.00	--메프로바메이트(INN)	0	0
2924.12.00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모노크로토포스(ISO) 및 포스파미돈(ISO)	0	0
2924.19.00	--기타	0	0
2924.2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2924.21.00	--우레인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0	0
2924.23.00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 안트라닐산) 및 그 염	0	0
2924.24.00	--에티나메이트(INN)	0	0
2924.29.00	--기타	0	0
2925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 및 이민관능화합물		
2925.1	-이미드와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2925.11.00	--사카린과 그 염	0	0
2925.12.00	--글루테티미드(INN)	0	0
2925.19.00	--기타	0	0
2925.2	-이민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2925.21.00	--클로르디메포름(ISO)	0	0
2925.29.00	--기타	0	0
2926	니트릴관능화합물		
2926.10.00	-아크릴로니트릴	0	0
2926.20.00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0	0
2926.30.00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메타돈(INN) 제조중간체(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0	0
2926.90.00	-기타	0	0
2927.00.00	디아조화합물 · 아조화합물 또는 아족시화합물	0	0
2928.00.00	히드라진 또는 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0	0
2929	기타 질소관능화합물		
2929.10.00	-이소시아네이트	0	0
2929.90.00	-기타	0	0
2930	유기-황화합물		
2930.20.00	-티오카르바메이트와 디티오카르바메이트	0	0
2930.30.00	-티우람모노술파이드 · 티우람디술파이드 또는 티우람테트라술파이드	0	0
2930.40.00	-메티오닌	0	0
2930.50.00	-캡타풀(ISO) 및 메타미도포스(ISO)	0	0
2930.90.00	-기타	0	0
2931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2931.10.00	-테트라메틸납 및 테트라에틸납	0	0
2931.20.00	-트리부틸틴 화합물	0	0
2931.90	-기타		
2931.90.10	---포스포노기를 함유하는 글리신 유도체	5	0
2931.90.90	---기타	0	0
2932	산소헤테로 원자(들)만을 가진 산소헤테로고리 화합물		
2932.1	-붙지 아니한 푸란고리(수소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2.11.00	--테트라히드로푸란	0	0
2932.12.00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0	0
2932.13.00	--푸르푸릴 알코올과 테트라히드로 푸르푸릴 알코올	0	0
2932.19.00	--기타	0	0
2932.20.00	-락톤	0	0
2932.9	-기타		
2932.91.00	--이소사프롤	0	0
2932.92.00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0	0
2932.93.00	--피페로날	0	0
2932.94.00	--사프롤	0	0
2932.95.00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0	0
2932.99.00	--기타	0	0
2933	질소헤테로 원자(들)만을 가진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		
2933.1	-붙지 아니한 피라졸고리(수소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11.00	--페나존(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0	0
2933.19.00	--기타	0	0
2933.2	-붙지 아니한 이미다졸고리(수소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21.00	--히단토인과 그 유도체	0	0
2933.29.00	--기타	0	0
2933.3	-붙지 아니한 피리딘고리(수소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31.00	--피리딘과 그 염	0	0
2933.32.00	--피페리딘과 그 염	0	0
2933.33.00	--알펜타닐(INN), 아닐레리딘(INN), 베지트라마이드(INN), 브로마제팜(INN), 디페녹신(INN), 디펜옥실레이트(INN), 디피파논(INN), 펜타닐(INN), 케토베미돈(INN), 메틸페니데이트(INN), 펜타조신(INN), 페치딘(INN), 페치딘(INN) 제조중간체 에이, 펜사이클리딘(INN)(PCP), 페노페리딘(INN), 피프라드롤(INN), 피리트라미드(INN), 프로피람(INN) 및 트리메페리딘(INN), 그들의 염	0	0
2933.39.00	--기타	0	0
2933.4	-퀴놀린고리 또는 이소퀴놀린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첨가 여부를 불문하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933.41.00	--레보파놀(INN) 및 그 염	0	0
2933.49.00	--기타	0	0
2933.5	-피리미딘고리(수소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52.00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0	0
2933.53.00	--아로바르비탈(INN), 아모바르비탈(INN), 바르비탈(INN), 부탈비탈(INN), 부토바르비탈(INN), 싸이클로바르비탈(INN), 메틸페노바르비탈(INN), 펜토바르비탈(INN), 페노바르비탈(INN), 섹부타바르비탈(INN), 세코바르비탈(INN) 및 비닐비탈(INN), 그들의 염	0	0
2933.54.00	--기타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 유도체, 그들의 염	0	0
2933.55.00	--로프라졸람(INN), 메크로콰론(INN), 메타콰론(INN) 및 지페프롤(INN), 그들의 염	0	0
2933.59.00	--기타	0	0
2933.6	-붙지 아니한 트리아진고리(수소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61.00	--멜라민	0	0
2933.69.00	--기타	0	0
2933.7	-락탐		
2933.71.00	--6-헥산락탐(엡실론-카프로락탐)	0	0
2933.72.00	--클로바잠(INN)과 메티프릴론(INN)	0	0
2933.79.00	--기타 락탐	0	0
2933.9	-기타		
2933.91.00	--알프라졸람(INN), 카마제팜(INN),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 클로나제팜(INN), 클로라제페이트, 델로라제팜(INN), 디아제팜(INN), 에스타졸람(INN), 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 플루디아제팜(INN), 플루니트라제팜(INN), 플루라제팜(INN), 할라제팜(INN), 로라제팜(INN), 로르메타제팜(INN), 마진돌(INN), 메다제팜(INN), 미다졸람(INN), 니메타제팜(INN), 니트라제팜(INN), 노르다제팜(INN), 옥사제팜(INN), 피나제팜(INN), 프라제팜(INN), 피로발레론(INN), 테마제팜(INN), 테트라제팜(INN) 및 트리아졸람(INN), 그들의 염	0	0
2933.99.00	--기타	0	0
2934	핵산 및 그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기타 헤테로고리 화합물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2934.10.00	-붙지 아니한 티아졸고리(수소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0	0
2934.20.00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첨가 여부를 불문하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2934.30.00	-페노티아진 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첨가 여부를 불문하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2934.9	-기타		
2934.91.00	--아미노렉스(INN), 브로티졸람(INN), 클로티아제팜(INN), 클록사졸람(INN), 덱스트로모라마이드(INN), 할록사졸람(INN), 케타졸람(INN), 메소카브(INN), 옥사졸람(INN), 페몰린(INN), 펜디메트라진(INN), 펜메트라진(INN) 및 서펜타닐(INN), 그들의 염	0	0
2934.99.00	--기타	0	0
2935.00.00	술폰아미드	0	0
2936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한하며, 천연의 농축물은 포함한다) 및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936.2	-비타민과 그들의 유도체(혼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936.21.00	--비타민 A와 그들의 유도체	0	0
2936.22.00	--비타민 B1과 그 유도체	0	0
2936.23.00	--비타민 B2와 그 유도체	0	0
2936.24.00	--디 또는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3 또는 비타민 B5)과 그 유도체	0	0
2936.25.00	--비타민 B6와 그 유도체	0	0
2936.26.00	--비타민 B12와 그 유도체	0	0
2936.27.00	--비타민 C와 그 유도체	0	0
2936.28.00	--비타민 E와 그 유도체	0	0
2936.29.00	--기타 비타민과 그들의 유도체	0	0
2936.90.00	-기타(천연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0	0
2937	호르몬, 프로스타글란딘, 트롬복산 및 류코트리엔(천연의 것 또는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 그들의 유도체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 것(변성된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2937.1	-폴리펩타이드 호르몬, 프로테인 호르몬과 글리코프로테인 호르몬, 그들의 유도체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11.00	--소마토트로핀, 그 유도체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0	0
2937.12.00	--인슐린과 그 염	0	0
2937.19.00	--기타	0	0
2937.2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들의 유도체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21.00	-- 코르티손·히드로코르티손·프레드니손(데히드로코르티손)과 프레드니소론(데히드로히드로코르티손)	0	0
2937.22.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0	0
2937.23.00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0	0
2937.29.00	--기타	0	0
2937.50	-프로스타글랜딘, 트롬복산과 류코트리엔, 그들의 유도체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50.10	---제 2918.9 호의 카르복시산을 기제로 한 것	5	0
2937.50.90	---기타	0	0
2937.90.00	-기타	0	0
2938	글리코시드(천연의 것 또는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 및 그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2938.10.00	-루토시드(루틴)와 그 유도체	0	0
2938.90.00	-기타	0	0
2939	식물 알칼로이드(천연의 것 또는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 및 그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2939.1	-아편의 알칼로이드와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2939.11.00	--양귀비 줄기 농축물, 버프레노핀(INN),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INN), 에틸모르핀, 에토르핀(INN), 헤로인, 히드로코돈(INN), 히드로모르폰(INN), 모르핀, 니코모르핀(INN), 옥시코돈(INN), 옥시모르폰(INN), 파코딘(INN), 테바콘(INN)과 테바인, 그들의 염	0	0
2939.19.00	--기타	0	0
2939.20.00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0	0
2939.30.00	-카페인과 그 염	0	0
2939.4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2939.41.00	--에페드린과 그 염	0	0
2939.42.00	--슈도에페드린(INN)과 그 염	0	0
2939.43.00	--캐친(INN)과 그 염	0	0
2939.44.00	--노르에페드린과 그 염	0	0
2939.49.00	--기타	0	0
2939.5	-테오피린과 아미노피린(테오피린-에틸렌디아민) 및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2939.51.00	--페네틸린(INN)과 그 염	0	0
2939.59.00	--기타	0	0
2939.6	-맥각 알칼로이드와 그 유도체, 그들의 염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2939.61.00	--엘고메트린(INN)과 그 염	0	0
2939.62.00	--엘고타민(INN)과 그 염	0	0
2939.63.00	--리세르그산과 그 염	0	0
2939.69.00	--기타	0	0
2939.9	-기타		
2939.91.00	--코카인 · 에크고닌 · 레보메탐페타민 · 메탐페타민(INN), 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그들의 염, 그들의 에스테르와 기타 그들의 유도체	0	0
2939.99.00	--기타	0	0
2940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에 한하며, 자당 · 유당 · 맥아당 · 포도당 및 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 · 당아세탈 · 당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제 2937 호 · 제 2938 호 또는 제 2939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940.00.10	---분자 당 2 개 이상의 수산기를 함유하는 폴리히드록시 에테르 화합물 및 반응된 프로필렌옥사이드를 전중량의 50 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폴리에스터는 제외한다)	5	0
2940.00.90	---기타	0	0
2941	항생물질		
2941.10.00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0	0
2941.20.00	-스트렙토마이신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0	0
2941.30.00	-테트라사이클린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0	0
2941.40.00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그 염	0	0
2941.50.00	-에리즈로마이신과 그 유도체, 그 염	0	0
2941.90.00	-기타	0	0
2942.00.00	기타 유기화합물	0	0
30	의약용품		
3001	장기 요법용의 선과 기타 기관 (건조한 것에 한하며, 분상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선 · 기타 기관 또는 그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 요법용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한 기타 인간 또는 동물성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3001.20.00	-선 · 기타 기관 또는 그들의 분비물의 추출물	0	0
3001.90.00	-기타	0	0
3002	인혈, 치료용 · 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 · 기타 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백신 · 독소 · 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3002.10	-면역혈청 · 기타 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3002.10.10	---다음과 같은 변성되지 않은 면역물품: (가) 제 39 류의 주 제 6 호에 기술된 일차제품의 폴리에테르, (나) 제 39 류의 주 제 6 호에 기술된 일차제품의 천연 증합체	5	0
3002.10.90	---기타	0	0
3002.20.00	-백신(인체의약용의 것에 한한다)	0	0
3002.30.00	-백신(동물의약용의 것에 한한다)	0	0
3002.90.00	-기타	0	0
3003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 3002 호 · 제 3005 호 또는 제 3006 호의 물품과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3003.10.00	-페니실린 또는 그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에 한한다)를 함유한 것 또는 스트렙토마이신 또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0	0
3003.20.00	-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0	0
3003.3	-호르몬 또는 제 2937 호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3003.31.00	--인슐린을 함유한 것	0	0
3003.39.00	--기타	0	0
3003.40.00	-알칼로이드 또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호르몬 또는 제 2937 호의 기타 물품 또는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0	0
3003.90.00	-기타	0	0
3004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제 3002 호 · 제 3005 호 또는 제 3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004.10.00	-페니실린 또는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에 한한다)를 함유한 것 또는 스트렙토마이신 또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0	0
3004.20.00	-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0	0
3004.3	-호르몬 또는 제 2937 호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3004.31.00	--인슐린을 함유한 것	0	0
3004.32.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 그들의 유도체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0	0
3004.39.00	--기타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3004.40.00	-알칼로이드 또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호르몬·제 2937 호의 기타 물품 또는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0	0
3004.50.00	-비타민 또는 제 2936 호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기타 의약품	0	0
3004.90.00	-기타	0	0
3005	탈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약물질을 도포 또는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		
3005.10.00	-접착성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기타 물품	5	0
3005.90	-기타		
3005.90.10	---탈지면(코튼울과 흡수면을 포함한다)	5	0
3005.90.90	---기타	5	0
3006	의약용품(이 류의 주 제 4 호의 것에 한한다)		
3006.10	-살균한 외과용의 캣거트,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흡수성 외과용 또는 치과용 사(絲)를 포함한다) 및 살균한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살균한 라미나리아의 텐트, 살균한 흡수성 외과용 또는 치과용 지혈제, 살균한 외과용 또는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3006.10.1	---살균한 외과용 또는 치과용 플라스틱제의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3006.10.11	----제 3920 호에서 기술된 형태로, 가소제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 퍼센트 이상인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5	0
3006.10.12	----제 3920 호에서 기술된 형태의 플라스틱제로 다음의 것: (가) 에틸렌 중합체의 것, (나) 스티렌 중합체의 것, (다) 염화비닐 중합체의 것, NSA, (라) 폴리(비닐 부티랄)의 것, (마) 폴리아미드의 것	5	0
3006.10.13	----제 3920 호에서 기술된 형태의 플라스틱제로 다음의 것: (가) 셀룰로오스 또는 그들의 화학적 유도체, (나) 아미노수지의 것, (다) 페놀수지의 것	0	0
3006.10.14	----제 3921 호에서 기술된 형태의 플라스틱제로 다음의 것: (가) 스티렌 중합체의 것, (나) 염화비닐의 것, (다) 폴리우레탄의 것	5	0
3006.10.15	----셀룰로오스 또는 그 화학적 유도체(도포·피복 또는 적층된 것에 한한다), NSA	0	0
3006.10.19	----기타 플라스틱제의 것	5	0
3006.10.2	---직물제의 살균한 외과용 또는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3006.10.21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의 형태로 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퍼센트 이상인 것	5	0
3006.10.22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기타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의 것	5	0
3006.10.29	----기타 메리약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의 것	5	0
3006.10.90	---기타	0	0
3006.20.00	-혈액 분류용 시약	0	0
3006.30.00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	0	0
3006.40.00	-치과용 시멘트와 기타 치과용 충전제, 뼈형성용 시멘트	5	0
3006.50.00	-구급상자와 구급대	0	0
3006.60.00	-호르몬·제 2937 호의 기타 물품 또는 살정자제를 기제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0	0
3006.70.00	-외과 수술이나 신체검사시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 또는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 또는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 조제품	5	0
3006.9	-기타		
3006.91.00	--장루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5	0
3006.92	--폐의약용품		
3006.92.10	---다음의 물품: (가) 제 3005.90.10 호의 물품, (나) 제 3006.40.00 호의 물품	5	0
3006.92.20	---제 3005 호의 물품의 것, NSA	5	0
3006.92.30	---제 30 류의 물품의 것, NSA	0	0
3006.92.90	---기타	5	0
31	비료		
3101.00.00	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0	0
3102	질소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3102.10.0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3102.2	-황산암모늄,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3102.21.00	--황산암모늄	0	0
3102.29.00	--기타	0	0
3102.30.00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3102.40.00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 또는 기타 비료가 아닌 무기물을 가한 것에 한한다)	0	0
3102.50.00	-질산나트륨	0	0
3102.60.00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겹염 및 혼합물	0	0
3102.80.00	-요소 및 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 또는 암모니아용액으로 한 것에 한한다)	0	0
3102.90.00	-기타(위의 소호에 열거하지 아니한 혼합물을 포함한다)	0	0
3103	인산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3103.10.00	-과인산석회	0	0
3103.90.00	-기타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3104	칼륨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3104.20.00	-염화칼륨	0	0
3104.30.00	-황산칼륨	0	0
3104.90.00	-기타	0	0
3105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비료요소인 질소·인 및 칼륨 중 2종 또는 3종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기타 비료, 이 류의 물품을 정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3105.10.00	-이 류의 물품(정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 또는 용기를 포함한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0	0
3105.20.00	-3종의 비료요소인 질소·인 및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0	0
3105.30.0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0	0
3105.40.0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및 이와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0	0
3105.5	-2종의 비료요소인 질소와 인을 함유한 기타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3105.51.00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0	0
3105.59.00	--기타	0	0
3105.60.00	-2종의 비료요소인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0	0
3105.90.00	-기타	0	0
32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 및 그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기타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시, 퍼티와 기타 매스틱, 잉크		
3201	식물성 유연엑스, 탄닌과 그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 및 기타 유도체		
3201.10.00	-퀘브라쵸 엑스	0	0
3201.20.00	-왓틀엑스	0	0
3201.90.00	-기타	0	0
3202	합성유기유연제, 무기유연제, 조제유연제(천연유연제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유연전 처리용의 효소계 조제품		
3202.10.00	-합성유기유연제	0	0
3202.90.00	-기타	0	0
3203.00.00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염색엑스를 포함하나 수탄은 제외한다),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에 한한다)	0	0
3204	합성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에 한한다), 형광증백제 또는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물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3204.1	-합성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에 한한다)		
3204.11.00	--분산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5	0
3204.12.00	--산성염료(금속염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매염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5	0
3204.13.00	--염기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5	0
3204.14.00	--직접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0	0
3204.15.00	--건염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0	0
3204.16.00	--반응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5	0
3204.17.00	--안료색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5	0
3204.19.00	--기타(제3204.11.00호부터 제3204.19.00호까지의 두개 이상의 착색제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5	0
3204.20.00	-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물품	5	0
3204.90.00	-기타	5	0
3205.00.00	레이크안료,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에 한한다)	5	0
3206	기타 착색제, 조제품(제3203.00.00호·제3204호 또는 제3205.00.0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에 한한다),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3206.1	-이산화티타늄을 기제로 한 안료 및 그 조제품		
3206.11.00	--건조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0퍼센트 이상인 것	5	0
3206.19.00	--기타	5	0
3206.20.00	-크로뮴화합물을 기제로 한 안료 및 그 조제품	5	0
3206.4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		
3206.41.00	--군청 및 이를 기제로 한 조제품	0	0
3206.42.00	--황아연을 기제로 한 리도폰 및 기타 안료와 조제품	0	0
3206.49	--기타		
3206.49.10	---다음의 물품: (가) 카드뮴 화합물을 기제로 한 안료와 조제품, (나) 육시안산철염(페로시아나이드 및 페리시아나이드)을 기제로 한 안료와 조제품	0	0
3206.49.90	---기타	5	0
3206.50.00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무기물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3214	초자용의 퍼티 · 접목용의 퍼티 · 수지시멘트 · 콕킹화합물과 기타 매스틱, 도장용 충전제 및 건물의 외면 · 실내벽 · 마루 · 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3214.10.00	-초자용의 퍼티 · 접목용의 퍼티 · 수지시멘트 · 콕킹화합물과 기타 매스틱, 도장용 충전제	5	0
3214.90.00	-기타	5	0
3215	인쇄용 잉크 · 필기용 잉크 또는 제도용 잉크 및 기타의 잉크(농축 또는 고체화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3215.1	-인쇄용 잉크		
3215.11.00	--흑색의 것	5	0
3215.19.00	--기타	5	0
3215.90.00	-기타	5	0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3301	정유(콘크리트와 앱설루트의 것을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레지노이드, 추출한 올레오레진, 정유의 농축물(냉흡수법 또는 온침법에 따라 얻어진 것으로서 유지 · 비휘발성유 · 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로 한 것에 한한다),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및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		
3301.1	-정유(감귤류의 것에 한한다)		
3301.12.00	--오렌지유의 것	0	0
3301.13.00	--레몬유의 것	0	0
3301.19.00	--기타	0	0
3301.2	-정유(감귤류 외의 것에 한한다)		
3301.24.00	--박하유(멘타 피페리타)	0	0
3301.25.00	--기타 민트류의 것	0	0
3301.29.00	--기타	0	0
3301.30.00	-레지노이드	0	0
3301.90.00	-기타	0	0
3302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 및 해당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제로 한 혼합물(알코올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기타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3302.10	-식품공업용 또는 음료공업용의 것		
3302.10.1	---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것		
3302.10.11	----"앙고스트라 아로마틱 비터"(Angostura aromatic bitters)로 알려진 조제품	0	0
3302.10.12	----알코올성 합성조제품, NSA	5	0
3302.10.19	----기타	4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3207	조제안료 · 조제유백제 및 조제그림물감 · 법랑 및 유약 · 엔고베(슬립) · 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 · 에나멜 또는 유리공업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 · 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		
3207.10.00	-조제안료 · 조제유백제 · 조제그림물감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5	0
3207.20.00	-법랑과 유약 · 엔고베(슬립)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5	0
3207.30.00	-액상라스터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0	0
3207.40.00	-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 · 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	0	0
3208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3208.10.00	-폴리에스테르를 기제로 한 것	5	0
3208.20.00	-아크릴 또는 비닐 중합체를 기제로 한 것	5	0
3208.90.00	-기타	5	0
3209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3209.10.00	-아크릴 또는 비닐 중합체를 기제로 한 것	5	0
3209.90.00	-기타	5	0
3210.00.00	기타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 · 래커 및 디스템퍼를 포함한다), 피혁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수성안료	5	0
3211.00.00	조제드라이어	5	0
3212	비수성 매질에 분산시킨 안료[금속분 및 금속플레이크를 포함하며, 페인트(에나멜을 포함한다) 제조에 사용되는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에 한한다], 스탬프용의 박,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염료와 기타 착색제		
3212.10.00	-스탬프용의 박	5	0
3212.90.00	-기타	5	0
3213	화가용 · 학생용 또는 간판도장공용 · 정색용 · 유희용의 회구류 및 이와 유사한 회구류(정제의 것 · 튜브들이 · 병들이 · 접시들이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 또는 포장의 것에 한한다)		
3213.10.00	-세트상의 회구류	5	0
3213.90.00	-기타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3302.10.90	---기타	5	0
3302.90.00	-기타	5	0
3303.00.00	향수 및 화장수	5	0
3304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 또는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 또는 페디큐어용 제품류		
3304.10.00	-입술화장용 제품류	5	0
3304.20.00	-눈화장용 제품류	5	0
3304.30.00	-매니큐어용 제품류 또는 페디큐어용 제품류	5	0
3304.9	-기타		
3304.91.00	--분말상의 것(압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0
3304.99.00	--기타	5	0
3305	두발용 제품류		
3305.10.00	-샴푸	5	0
3305.20.00	-퍼머넌트 웨이빙용 또는 스트레이트닝용 제품류	5	0
3305.30.00	-헤어 래커	5	0
3305.90.00	-기타	5	0
3306	구강 또는 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의 페이스트 및 분을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사(덴탈 플로스)로서 개별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에 한한다		
3306.10.00	-치약	5	0
3306.20	-치간 청결용 사(덴탈 플로스)		
3306.20.1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강력사의 것	0	0
3306.20.90	---기타	5	0
3306.90.00	-기타	5	0
3307	프리쉐이브, 쉐이빙 또는 애프터쉐이브 제품류 · 인체용 탈취제 · 목욕용 조제품 · 탈모제와 기타 조제향료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품 또는 화장용품류, 실내용 조제방취제(가향하거나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307.10.00	-프리쉐이브, 쉐이빙 또는 애프터쉐이브 제품류	5	0
3307.20.00	-인체탈취제 및 내발한제	5	0
3307.30.00	-가향한 목욕용 염과 기타 목욕용 제품류	5	0
3307.4	-실내용 가향 또는 방취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조제품을 포함한다)		
3307.41.00	--"아가바티"와 기타 분향(焚香)	0	0
3307.49.00	--기타	5	0
3307.90.00	-기타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34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활제·인조왁스·조제왁스·광택 또는 연마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		
3401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봉상 · 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의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지 · 워딩 · 펠트와 부직포		
3401.1	-비누 ·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봉상 · 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의 것에 한한다) 및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지 · 워딩 · 펠트와 부직포		
3401.11.00	--화장용의 것(약용의 것을 포함한다)	5	0
3401.19.00	--기타	5	0
3401.20.00	-기타 형상의 비누	5	0
3401.30.00	-피부 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	0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계면활성제 · 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 3401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2.1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402.11.00	--음이온성의 것	5	0
3402.12.00	--양이온성의 것	5	0
3402.13.00	--비이온성의 것	5	0
3402.19.00	--기타	5	0
3402.20.00	-소매용으로 된 조제품	5	0
3402.90.00	-기타	5	0
3403	조제윤활유(윤활제를 기제로 한 조제절삭제 · 볼트 또는 너트방출제 · 방청제 또는 부식방지제 및 이형조제품을 포함한다)와 방직용 재료 · 가죽 · 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오일링처리 또는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70 퍼센트 이상인 것을 기제로 한 조제품을 제외한다)		
3403.1	-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는 것		
3403.11	--방직용 재료 · 가죽 · 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처리조제품		
3403.11.10	---고체 또는 반고체 상태의 것	0	0
3403.11.90	---기타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3403.19	--기타		
3403.19.10	---고체 또는 반고체 상태의 것	0	0
3403.19.90	---기타	0	0
3403.9	-기타		
3403.91	--방직용 재료·가죽·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처리조제품		
3403.91.10	---고체 또는 반고체 상태의 것	0	0
3403.91.90	---기타	0	0
3403.99	--기타		
3403.99.10	---고체 또는 반고체 상태의 것	0	0
3403.99.90	---기타	0	0
3404	인조왁스와 조제왁스		
3404.20.0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0	0
3404.90.00	-기타	5	0
3405	신발·가구·마루·자동차 차체·유리 또는 금속용의 광택제 및 크림·연마페이스트·연마분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지·워딩·펠트·부직포·셀룰라 플라스틱 또는 셀룰라 고무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제 3404 호의 왁스는 제외한다)		
3405.10.00	-신발 또는 가죽용의 광택제·크림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5	0
3405.20.00	-목제가구·마루 또는 기타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5	0
3405.30.00	-자동차 차체용의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	5	0
3405.40.00	-조제연마페이스트·조제연마분 및 기타 연마조제품	5	0
3405.90.00	-기타	5	0
3406.00.00	양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5	0
3407.00.00	조형용 페이스트(아동오락용의 것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재료"(세트의 것·소매용 포장의 것 또는 판상, 말굽상, 봉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플라스터(소석고 또는 황산칼슘제의 것에 한한다)를 기제로 한 기타 치과용 조제품	5	0
35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효소		
3501	카세인·카세인산염과 기타 카세인 유도체, 카세인글루		
3501.10.00	-카세인	0	0
3501.90.00	-기타	0	0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0 퍼센트를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알부민산염과 기타 알부민 유도체		
3502.1	-난백		
3502.11.00	--건조한 것	0	0
3502.19.00	--기타	0	0
3502.20.00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0	0
3502.90.00	-기타	0	0
3503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 기타 동물성글루(제 3501 호의 카세인글루는 제외한다)		
3503.00.10	---젤라틴	5	0
3503.00.90	---기타	0	0
3504.00.00	펩톤과 그들의 유도체,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하이드파우더(크롬명반을 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3505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예 :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 또는 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		
3505.10.00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0	0
3505.20.00	-글루	0	0
3506	조제글루와 기타 조제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 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3506.10.00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 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0
3506.9	-기타		
3506.91.00	--제 3901 호부터 제 3913 호까지의 폴리머 또는 고무를 기제로 한 접착제	5	0
3506.99.00	--기타	5	0
3507	효소,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효소		
3507.10.00	-레네트와 이들의 농축물	0	0
3507.90.00	-기타	0	0
36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3601.00.00	화약	5	0
3602.00.00	폭약(화약을 제외한다)	5	0
3603.00.00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	5	0
3604	불꽃제품·신호용 조명탄·레인로켓·안개 신호용품 및 기타 화공품		
3604.10.00	-불꽃제품	5	0
3604.90.00	-기타	5	0
3605.00.00	성냥(제 3604 호의 화공품을 제외한다)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3606	페로세륨 및 기타 발화성 합금(형상을 불문한다). 이 류의 주 제 2 호의 가연성 재료의 제품		
3606.10.00	-끽연용 라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 또는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에 넣어진 액체연료 또는 액화가스연료	0	0
3606.90.00	-기타	0	0
37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3701	평면상 사진플레이트 및 평면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지제·판지제 또는 직물제를 제외한다), 평면상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701.10.00	-엑스선용의 것	5	0
3701.20.0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5	0
3701.30.00	-기타의 플레이트와 필름(한 변의 길이가 25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	0
3701.9	-기타		
3701.91.00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5	0
3701.99.00	--기타	5	0
3702	롤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지제·판지제 또는 직물제를 제외한다), 롤상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702.10.00	-엑스선용의 것	5	0
3702.3	-기타 필름(구멍이 없는 것으로서 폭이 105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3702.31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3702.31.1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0	0
3702.31.90	---기타	5	0
3702.32	--기타(할로겐화은 에멀젼으로 된 것에 한한다)		
3702.32.1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0	0
3702.32.90	---기타	5	0
3702.39	--기타		
3702.39.1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0	0
3702.39.90	---기타	5	0
3702.4	-기타 필름(구멍이 없는 것으로서 폭이 10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3702.41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3702.41.1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0	0
3702.41.90	---기타	5	0
3702.42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를 초과하는 것(천연색 사진용의 것을 제외한다)		
3702.42.1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0	0
3702.42.90	---기타	5	0
3702.43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 이하인 것		
3702.43.1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0	0
3702.43.90	---기타	5	0
3702.44	--폭이 105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6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3702.44.1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0	0
3702.44.90	---기타	5	0
3702.5	-기타필름[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3702.52	--폭이 16 밀리미터 이하인 것		
3702.52.10	---길이가 14 미터 이하인 것	0	0
3702.52.90	---기타	5	0
3702.53.00	--폭이 16 밀리미터 초과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의 것에 한한다)	5	0
3702.54.00	--폭이 16 밀리미터 초과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의 것은 제외한다)	5	0
3702.55.00	--폭이 16 밀리미터 초과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를 초과하는 것	5	0
3702.56.00	--폭이 3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3702.9	-기타		
3702.96	--폭이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		
3702.96.10	---폭이 16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3702.96.90	---기타	5	0
3702.97.00	--폭이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초과인 것	0	0
3702.98.00	--폭이 3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3703	사진인화지·판지 및 직물(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703.10	-롤상의 것(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3703.10.10	---힐리오그래픽 용지, 블루용지 및 이와 유사한 용지의 제조에 사용되는 종이	0	0
3703.10.90	---기타	5	0
3703.20.00	-기타[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에 한한다]	5	0
3703.90.00	-기타	5	0
3704.00.00	사진플레이트·필름·인화지·판지 및 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3705	사진플레이트 및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에 한하며, 영화용 필름을 제외한다)		
3705.10.00	-오프셋 복사용의 것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3705.90	-기타		
3705.90.20	---다음의 물품: (가) 필름, 필름스트립, 슬라이드와 투명필름, (나) 마이크로 필름	0	0
3705.90.90	---기타	5	0
3706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에 한하며, 사운드트랙이 있는 것인지 또는 사운드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706.10.00	-폭이 35 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3706.90.00	-기타	0	0
3707	사진용의 화학조제품(바니시 · 글루 · 접착제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제외한다), 사진용의 단일물품(일정량으로 소분하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		
3707.10.00	-감광유제	5	0
3707.90.00	-기타	5	0
38	각종 화학공업 물품		
3801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 또는 반콜로이드흑연, 흑연 또는 기타 탄소를 기제로 한 조제품(페이스트상 · 블록상 · 판상 또는 기타 반제품의 것에 한한다)		
3801.10.00	-인조흑연	0	0
3801.20.00	-콜로이드흑연 또는 반콜로이드흑연	0	0
3801.30.0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 및 노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	0	0
3801.90.00	-기타	0	0
3802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물품, 수탄(폐수탄을 포함한다)		
3802.10.00	-활성탄	0	0
3802.90.00	-기타	0	0
3803.00.00	토올오일(정제여부를 불문한다)	0	0
3804.00.00	목재펄프 제조시 생기는 폐액(농축 또는 당류를 제거하거나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리그닌술폰산을 포함하나, 제 3803.00.00 호의 토올오일은 제외한다)	0	0
3805	검테레빈유 · 우드테레빈유 또는 황산테레빈유 및 기타 테르펜계유(증류 또는 기타 방법에 따라 침엽수에서 얻은 것에 한한다), 조상의 디펜틴, 아황산테레빈과 기타 조상의 파라시멘, 파인유(주성분이 알파테르피네올인 것에 한한다)		
3805.10.00	-검테레빈유 · 우드테레빈유 또는 황산테레빈유	0	0
3805.90.00	-기타	0	0
3806	로진과 수지산 및 이들의 유도체, 로진스프릿과 로진유, 런검		
3806.10.00	-로진과 수지산	0	0
3806.20.00	-로진염·수지산염 또는 로진이나 수지산의 유도체의 염(로진 부가물의 염은 제외한다)	0	0
3806.30.00	-에스테르 검	5	0
3806.90.00	-기타	0	0
3807.00.00	목타르 · 목타르유 · 목크레오소트, 목나프타, 식물성피치, 브루어피치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 · 수지산 또는 식물성피치를 기제로 한 것에 한한다)	0	0
3808	살충제 · 살서제(쥐약) · 살균제 · 제초제 · 발아억제제 및 식물성장조절제 · 소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 또는 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 · 심지 · 양초 및 파리잡이 끈끈이)에 한한다]		
3808.50	-이 류의 소호주 제 I 호의 물품		
3808.50.10	---다음의 물품: (가)파리 끈끈이, (나)나선형과 코일형의 모기퇴치제	0	0
3808.50.90	---기타	5	0
3808.9	-기타		
3808.91	--살충제		
3808.91.10	---제 3808.50.10 호의 물품을 제외한 다음의 물품: (가) 장뇌, (나) 파리잡는 끈끈이 종이, (다) 나선형과 코일형의 모기퇴치제	0	0
3808.91.90	---기타	5	0
3808.92.00	--살균제	5	0
3808.93.00	--제초제, 발아억제제 및 식물성장조절제	5	0
3808.94.00	--소독제	5	0
3808.99.00	--기타	5	0
3809	완성가공제 · 염색촉진용 또는 염료고착용의 염색캐리어 및 드레싱 및 매염제와 같은 기타의 물품과 조제품(섬유공업 · 제지공업 · 피혁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809.10.00	-전분질을 기제로 한 것	0	0
3809.9	-기타		
3809.91.00	--섬유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것	0	0
3809.92.00	--제지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것	0	0
3809.93.00	--피혁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것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3817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 2707 호 또는 제 2902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817.00.10	---혼합된 알킬벤젠	5	0
3817.00.20	---혼합된 알킬나프탈렌	0	0
3818.00.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원소(디스크상 · 웨이퍼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화합물	0	0
3819.00.00	유압제동액과 기타 조제유압전동액(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70 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	5	0
3820.00.00	부동조제품 및 조제제빙액	5	0
3821	미생물(바이러스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식물 · 인간 또는 동물세포의 성장 및 보존을 위한 조제배양제		
3821.00.10	---식물 · 인간 또는 동물세포의 성장 또는 보존을 위한 조제배양제	5	0
3821.00.90	---기타	0	0
3822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 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 3002 호 또는 제 3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		
3822.00.1	---제 39 류의 주 제 10 호에 기술된 형태로 플라스틱으로 뒷편을 보강한 것		
3822.00.11	----셀룰로오스의 것	0	0
3822.00.19	----기타 플라스틱의 것	5	0
3822.00.20	---플라스틱으로 뒷편을 보강한 것, NSA	5	0
3822.00.3	---다음의 물품: (가)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 (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면이 36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면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3822.00.31	----시험용 종이와 판지	0	0
3822.00.39	----기타	5	0
3822.00.40	---종이나 판지로 뒷편을 보강한 것, NSA	5	0
3822.00.50	---보증된 참조물질(이 류의 주 제 2 호에 기술된 것에 한한다)	0	0
3822.00.90	---기타	0	0
3823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3823.1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3810	금속표면처리용의 침지조제품, 납붙임 · 땜질 또는 용접용의 용제와 기타 보조 조제품, 납붙임 · 땜질 또는 용접용의 분말과 페이스트로서 금속과 기타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의 전극 또는 용접봉의 코어 또는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3810.10.00	-금속표면처리용의 침지조제품, 납붙임 · 땜질 또는 용접용의 분말과 페이스트상으로서 금속과 기타 재료로 조성한 것	0	0
3810.90.00	-기타	0	0
3811	안티녹제 · 산화억제제 · 검화억제제 · 점도향상제 · 부식방지제와 기타 조제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 또는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기타 액체용의 것에 한한다]		
3811.1	-안티녹제		
3811.11.00	--납화합물을 기제로 한 것	0	0
3811.19.00	--기타	0	0
3811.2	-윤활유 첨가제		
3811.21	--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는 것		
3811.21.10	---고체 또는 반고체 형태	0	0
3811.21.90	---기타	0	0
3811.29.00	--기타	0	0
3811.90.00	-기타	0	0
3812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 조제품과 기타 복합안정제		
3812.10.00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0	0
3812.20.00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0	0
3812.30.00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 조제품과 기타 복합안정제	5	0
3813.00.00	소화기용의 조제품과 장전물, 장전된 소화탄	5	0
3814.00.00	유기혼합용제와 신나(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제한 페인트 제거제 또는 바니시 제거제	5	0
3815	반응시작제 · 반응촉진제 및 촉매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815.1	-서포트된 촉매		
3815.11.00	--활성물질로서 니켈 또는 니켈화합물의 것	5	0
3815.12.00	--활성물질로서 귀금속 또는 귀금속화합물의 것	5	0
3815.19.00	--기타	5	0
3815.90.00	-기타	5	0
3816.00.00	내화시멘트 · 내화모르타르 · 내화콘크리트 및 이와 유사한 혼합물(제 3801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3823.11.00	--스테아르산	5	0
3823.12.00	--올레인산	5	0
3823.13.00	--톨유 지방산	5	0
3823.19.00	--기타	5	0
3823.70.00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0	0
3824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품의 혼합물로 된 것을 포함한다)		
3824.10.00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0	0
3824.30.00	-응집하지 아니한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0	0
3824.40.00	-시멘트용 · 모르타르용 또는 콘크리트용의 조제첨가제	5	0
3824.50.00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0	0
3824.60.00	-솔비톨(소호 제 2905.44.00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0	0
3824.7	-메탄, 에탄 또는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함유한 혼합물		
3824.71.00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는 것[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3824.72.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또는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을 함유하는 것	0	0
3824.73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		
3824.73.10	---퍼할로겐화유도체(서로 다른 2 종 이상의 할로겐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를 함유하는 것	0	0
3824.73.90	---기타	5	0
3824.74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의 함유 여부는 불문하지만,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824.74.10	---퍼할로겐화유도체(서로 다른 2 종 이상의 할로겐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를 함유하는 것	0	0
3824.74.90	---기타	5	0
3824.75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3824.75.10	---퍼할로겐화유도체(서로 다른 2 종 이상의 할로겐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를 함유하는 것	0	0
3824.75.90	---기타	5	0
3824.76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3824.76.10	---퍼할로겐화유도체(서로 다른 2 종 이상의 할로겐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를 함유하는 것	0	0
3824.76.90	---기타	5	0
3824.77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3824.77.10	---퍼할로겐화유도체(서로 다른 2 종 이상의 할로겐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를 함유하는 것	0	0
3824.77.90	---기타	5	0
3824.78	--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염화불화탄소(CFCs) 또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824.78.10	---퍼할로겐화유도체(서로 다른 2 종 이상의 할로겐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를 함유하는 것	0	0
3824.78.90	---기타	5	0
3824.79	--기타		
3824.79.10	---퍼할로겐화유도체(서로 다른 2 종 이상의 할로겐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를 함유하는 것	0	0
3824.79.90	---기타	5	0
3824.8	-옥시란(산화에틸렌),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혼합물과 조제품		
3824.81.00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하는 것	5	0
3824.82.00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5	0
3824.83.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하는 것	5	0
3824.90	-기타		
3824.90.10	---다음과 같은 물품: (가) 열처리한 조제품, (나) 식품 보존제, (다) 점토 광물의 유기 유도체, (라) 제게르콘과 기타 가용성 도자기류 소성 검사기, (마) 나프텐산, 그들 비수용성 염과 그들의 에스테르, (바) 제 2106.90.20 호의 것은 제외하고 금연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제(경피용 패치를 포함한다)	0	0
3824.90.40	---둘 이상의 다른 할로겐을 함유한 비환식탄화수소의 과할로겐화된 유도체를 포함하는 혼합물(제 3824.7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3824.90.50	---가솔린과 에탄올의 혼합물(제 2710 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0	0
3824.90.60	---디젤과 에탄올의 혼합물(제 2710 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0	0
3824.90.90	---기타	5	0
3825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 6 호의 기타 폐기물		
3825.10.00	-생활폐기물	5	0
3825.20.00	-하수 찌꺼기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3825.30	-임상폐기물		
3825.30.1	---탈지면, 거즈, 붕대와 제 3005 호의 유사 물품		
3825.30.11	----제 3005.10.00 호 또는 제 3005.90.90 호의 물품의 것	5	0
3825.30.19	----제 3005.90.10 호의 물품의 것	5	0
3825.30.20	---수술 장갑	5	0
3825.30.30	---주사기·바늘·카테터·케뉼러와 제 9018.31.00 호, 제 9018.32.00 호 또는 제 9018.39.00 호의 이와 유사한 물품	0	0
3825.30.90	---기타	5	0
3825.4	-폐 유기용제		
3825.41.00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5	0
3825.49.00	--기타	5	0
3825.50.00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및 부동액 폐기물	5	0
3825.6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기타 폐기물		
3825.61.00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5	0
3825.69.00	--기타	5	0
3825.90.00	-기타	5	0
3826	바이오디젤 및 그 혼합물(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70 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		
3826.00.10	---바이오디젤(제 2710 호 또는 제 3826.00.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3826.00.20	---바이오디젤과 기타 물질의 혼합물(제 2710 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0	0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1.10.0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인 것에 한한다)	5	5
3901.20.0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인 것에 한한다)	5	5
3901.30.0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5	3
3901.90.00	-기타	5	5
3902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2.10.00	-폴리프로필렌	5	3
3902.20.00	-폴리이소부틸렌	0	0
3902.30.00	-프로필렌 공중합체	5	3
3902.90.00	-기타	5	3
3903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3.1	-폴리스티렌		
3903.11.00	--발포성의 것	5	5
3903.19.00	--기타	5	5
3903.20.00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SAN) 공중합체	5	3
3903.30.0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공중합체	5	3
3903.90.00	-기타	5	3
3904	염화비닐의 중합체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4.10.0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5
3904.2	-기타 폴리(염화비닐)		
3904.21.00	--가소화하지 아니한 것	5	5
3904.22.00	--가소화 한 것	5	5
3904.30.00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5	3
3904.40.00	-기타 염화비닐 공중합체	5	5
3904.50.00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5	5
3904.6	-플루오르 중합체		
3904.61.00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5	5
3904.69.00	--기타	5	5
3904.90.00	-기타	5	5
3905	초산비닐의 중합체 또는 기타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기타 비닐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5.1	-폴리(초산비닐)		
3905.12.00	--물에 분산된 것	5	0
3905.19.00	--기타	5	0
3905.2	-초산비닐 공중합체		
3905.21.00	--물에 분산된 것	5	0
3905.29.00	--기타	5	0
3905.30.00	-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되지 아니한 초산기(基)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5	0
3905.9	-기타		
3905.91.00	--공중합체	5	0
3905.99.00	--기타	5	0
3906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6.10.00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5	0
3906.90.00	-기타	5	0
3907	폴리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7.10.00	-폴리아세탈수지	5	3
3907.20.00	-기타 폴리에테르	5	5
3907.30.00	-에폭시수지	5	3
3907.40.00	-폴리카보네이트	5	3
3907.50.00	-알키드수지	5	5
3907.60.0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5	5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3907.70.00	-폴리(락트산)	5	5
3907.9	-기타 폴리에스테르		
3907.91.00	--불포화의 것	5	5
3907.99	--기타		
3907.99.10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5	3
3907.99.90	---기타	5	3
3908	폴리아미드(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8.10.00	-폴리아미드 -6, -11, -12, -6,6, -6,9, -6,10 또는 -6,12	5	0
3908.90.00	-기타	5	0
3909	아미노수지·페놀수지 및 폴리우레탄(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9.10.00	-요소수지, 티오요소수지	5	0
3909.20.00	-멜라민수지	5	0
3909.30.00	-기타 아미노수지	5	0
3909.40.00	-페놀수지	5	0
3909.50	-폴리우레탄		
3909.50.10	---다음의 물품: (가) 폴리올 첨가 생성물 (1) 폴리에스테르폴리올, 또는 (2) 폴리에테르폴리올(산화에틸렌 또는 산화프로필렌 유도체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이소시아네이트와 반응하고, 미반응 수산기 또는 이소시아네이트기를 함유하며, 통상적으로 이러한 수산기 또는 이소시아네이트기를 통하여 후에 반응하는 것에 한한다), (나) 두 개 이상의 개별 구성 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된 물품으로서 함께 혼합할 때에는 폴리우레탄을 생성하는 것	5	3
3909.50.90	---기타	5	3
3910.00.00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5	0
3911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 및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911.10.00	-석유수지·쿠마론·인덴 또는 쿠마론-인덴수지 및 폴리테르펜	5	0
3911.90.00	-기타	5	0
3912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912.1	-초산셀룰로오스		
3912.11.00	--가소화하지 아니한 것	0	0
3912.12.00	--가소화 한 것	0	0
3912.20.00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5	0
3912.3	-셀룰로오스 에테르		
3912.31.00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와 그 염	5	0
3912.39.00	--기타	5	0
3912.90.00	-기타	5	0
3913	천연중합체(예: 알긴산) 및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913.10.00	-알긴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5	0
3913.90.00	-기타	5	0
3914.00.00	이온교환수지(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를 기제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5	0
3915	플라스틱의 웨이스트·페어링과 스크랩		
3915.1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5	0
3915.20.0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5	0
3915.30.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5	0
3915.90	-기타 플라스틱의 것		
3915.90.10	---다음의 플라스틱의 것: (가)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나) 비닐 중합체의 것, (다) 비닐리덴의 중합체의 것	5	0
3915.90.90	---기타 플라스틱의 것	5	0
3916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봉·스틱 및 형재(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3916.1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5	0
3916.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5	0
3916.90.00	-기타 플라스틱의 것	5	0
3917	플라스틱의 관·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엘보·플랜지)		
3917.10.00	-경화 단백질 또는 셀룰로오스 물질의 인조거트(소시지케이싱)	0	0
3917.2	-경질의 관·파이프 및 호스		
3917.21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3917.21.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품으로 사용되는 것	5	5
3917.21.90	---기타	5	0
3917.22.00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5	5
3917.23.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5	5
3917.29.00	--기타 플라스틱의 것	5	5
3917.3	-기타 관·파이프 및 호스		
3917.31	--연질(軟質)의 관·파이프 및 호스[파열압(破裂壓)이 27.6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에 한한다]		
3917.31.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품으로 사용되는 것	5	5
3917.31.90	---기타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3917.32	--기타(연결구류가 없는 것에 한하며, 기타 재료로 보강 또는 달리 결합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917.32.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품으로 사용되는 것	5	5
3917.32.90	---기타	5	0
3917.33	--기타(연결구류가 있는 것에 한하며, 기타 재료로 보강 또는 달리 결합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917.33.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품으로 사용되는 것	5	5
3917.33.90	---기타	5	0
3917.39	--기타		
3917.39.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품으로 사용되는 것	5	5
3917.39.90	---기타	5	0
3917.40.00	-연결구류	5	0
3918	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점착성 유무를 불문하며,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에 한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제의 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3918.10.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5	0
3918.90.00	-기타 플라스틱의 것	5	0
3919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 스트립 및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 여부를 불문한다)		
3919.10.00	-롤상의 것(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0
3919.90.00	-기타	5	0
3920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920.1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5	5
392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5	5
3920.30.0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5	5
3920.4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3920.43.00	--가소제의 함유량이 전증량의 6퍼센트 이상인 것	5	5
3920.49.00	--기타	5	5
3920.5	-아크릴 중합체의 것		
3920.51.00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의 것	5	5
3920.59.00	--기타	5	5
3920.6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 에스테르 또는 기타 폴리에스테르의 것		
3920.61.00	--폴리카보네이트의 것	5	5
3920.62.0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5	5
3920.63.0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의 것	5	3
3920.69.00	--기타 폴리에스테르의 것	5	5
3920.7	-셀룰로오스 또는 그 화학적 유도체의 것		
3920.71.00	--재생셀룰로오스의 것	0	0
3920.73.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	0
3920.79.00	--기타 셀룰로오스유도체의 것	0	0
3920.9	-기타 플라스틱의 것		
3920.91.00	--폴리(비닐 부티랄)의 것	5	3
3920.92.00	--폴리아미드의 것	5	5
3920.93.00	--아미노수지의 것	0	0
3920.94.00	--페놀수지의 것	0	0
3920.99.00	--기타 플라스틱의 것	5	5
3921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		
3921.1	-셀룰라		
3921.11.0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5	0
3921.12.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5	0
3921.13.00	--폴리우레탄의 것	5	0
3921.14.00	--재생셀룰로오스의 것	5	0
3921.19.00	--기타 플라스틱의 것	5	0
3921.90	-기타		
3921.90.10	---셀룰로오스 또는 셀룰로오스의 화학적 유도체의 것(도포, 피복 또는 적층된 것에 한한다)	0	0
3921.90.90	---기타	5	0
3922	플라스틱제의 목욕통·샤워통·설거지통·세면대·비데·화장실용 팬·변기용 시트와 커버·수세용 물탱크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3922.10.00	-목욕통·샤워통·설거지통과 세면대	5	0
3922.20.00	-변기용 시트와 커버	5	0
3922.90.00	-기타	5	0
3923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 뚜껑·마개·캡 및 기타 마개류(플라스틱제에 한한다)		
3923.10.00	-상자·케이스·바구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5	0
3923.2	-색과 백(콘을 포함한다)		
3923.21.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5	0
3923.29.00	--기타 플라스틱의 것	5	0
3923.30.00	-카보이병·병·플라스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5	0
3923.40.00	-스풀·콥·보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5	0
3923.50.00	-뚜껑·마개·캡 및 기타 마개류	5	0
3923.90.00	-기타	5	0
3924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		
3924.10.0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5	0
3924.90.00	-기타	5	0
3925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3925.10.00	-저장기·탱크·배트 및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	0
3925.20.00	-문·창과 그들의 문틀 및 문지방	5	0
3925.30.00	-셔터·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5	0
3925.90.00	-기타	5	0
3926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 3901 호부터 제 3914.00.00 호까지의 기타 재료의 제품		
3926.10.00	-사무용품 또는 학용품	5	0
3926.20	-의류 및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한다)		
3926.20.10	---코르셋 버스크	5	0
3926.20.2	---의류		
3926.20.21	----방사선 차단 슈트·오염 방지 슈트 및 유사한 보호용 의류	5	0
3926.20.29	----기타	10	5
3926.20.90	---기타	0	0
3926.30	-가구·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3926.30.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품으로 사용되는 것	5	5
3926.30.90	---기타	5	0
3926.40.00	-소상 및 기타 장식용품	5	0
3926.90	-기타		
3926.90.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품으로 사용되는 것	5	5
3926.90.90	---기타	5	0
40	고무와 그 제품		
4001	천연고무·발라타·구타페르카·구아울·치클 및 이와 유사한 천연검(일차제품 또는 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4001.10.00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4001.2	-천연고무(기타 형상의 것에 한한다)		
4001.21.00	--스모크드 쉬트	0	0
4001.22.00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0	0
4001.29.00	--기타	0	0
4001.30.00	-발라타·구타페르카·구아울·치클 및 이와 유사한 천연검	0	0
4002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제 4001 호의 물품과 이 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4002.1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 카르복시화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XSBR)		
4002.11.00	--라텍스	5	0
4002.19.00	--기타	5	0
4002.20.00	-부타디엔 고무(BR)	5	0
4002.3	-이소부텐-이소프렌(부틸)고무(IIR), 할로-이소부텐-이소프렌고무(CIIR 또는 BIIR)		
4002.31.00	--이소부텐-이소프렌(부틸)고무(IIR)	5	0
4002.39.00	--기타	5	0
4002.4	-클로로프렌(클로로부타디엔) 고무(CR)		
4002.41.00	--라텍스	5	0
4002.49.00	--기타	5	0
4002.5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4002.51.00	--라텍스	5	0
4002.59.00	--기타	5	0
4002.60.00	-이소프렌 고무(IR)	0	0
4002.70.00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EPDM)	5	0
4002.80.00	-제 4001 호의 물품과 제 4002 호의 물품과의 혼합물	5	0
4002.9	-기타		
4002.91.00	--라텍스	5	0
4002.99.00	--기타	5	0
4003.00.00	재생고무(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5	0
4004.00.00	고무의 웨이스트·페어링 및 스크랩(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분 및 입	5	0
4005	가황하지 아니한 배합고무(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4005.10.00	-카본블랙 또는 실리카와 배합한 것	5	0
4005.20.00	-용액, 분산액(제 4005.10.00 호의 것은 제외한다)	5	0
4005.9	-기타		
4005.91.00	--판·쉬트 및 스트립	5	0
4005.99.00	--기타	5	0
4006	가황하지 아니한 고무의 기타 형상(예: 봉·관 및 형재) 및 제품(예: 디스크 및 링)		
4006.10.00	-고무타이어 재생용 "캐멀-백" 스트립	5	0
4006.90.00	-기타	5	0
4007.00.00	고무사와 고무끈(가황한 것에 한한다)	5	0
4008	판·쉬트·스트립·봉 및 형재(가황한 고무의 것에 한하며, 경질고무의 것은 제외한다)		
4008.1	-셀룰라 고무의 것		
4008.11.00	--판·쉬트 및 스트립	5	0
4008.19.00	--기타	5	0
4008.2	-셀룰라 고무 외의 것		
4008.21	--판·쉬트 및 스트립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4008.21.10	---응고되기 전의 생라텍스에 곧바로 가황제를 첨가하여 얻은 천연고무 쉬트로서 천연고무의 탄화수소 함유량이 전중량의 90 퍼센트 이상인 것	0	0
4008.21.90	---기타	5	0
4008.29.00	--기타	5	0
4009	고무제의 관·파이프 및 호스(가황한 것에 한하고, 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하며, 조인트·엘보·플랜지 등 연결구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4009.1	-기타 재료로 보강 또는 달리 결합되지 아니한 것		
4009.1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4009.11.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품으로 사용되는 것	5	5
4009.11.90	---기타	5	0
4009.1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009.12.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품으로 사용되는 것	5	5
4009.12.90	---기타	5	0
4009.2	-금속으로만 보강 또는 달리 결합된 것		
4009.2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4009.21.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품으로 사용되는 것	5	5
4009.21.90	---기타	5	0
4009.2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009.22.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품으로 사용되는 것	5	5
4009.22.90	---기타	5	0
4009.3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 또는 달리 결합된 것		
4009.3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4009.31.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품으로 사용되는 것	5	5
4009.31.90	---기타	5	0
4009.3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009.32.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품으로 사용되는 것	5	5
4009.32.90	---기타	5	0
4009.4	-기타 재료로 보강 또는 달리 결합된 것		
4009.4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4009.41.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품으로 사용되는 것	5	5
4009.41.90	---기타	5	0
4009.4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009.42.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품으로 사용되는 것	5	5
4009.42.90	---기타	5	0
4010	고무제의 컨베이어용 또는 전동용 벨트 또는 벨팅(가황한 것에 한한다)		
4010.1	-컨베이어용 벨트 또는 벨팅		
4010.11.00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5	0
4010.12.00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5	0
4010.19.00	--기타	5	0
4010.3	-전동용 벨트 또는 벨팅		
4010.31.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 초과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에 한한다)	5	5
4010.32.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 초과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을 제외한다)	5	5
4010.33.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 초과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에 한한다)	5	5
4010.34.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 초과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을 제외한다)	5	3
4010.35.00	--엔드리스 싱크러너스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 초과 150 센티미터 이하인 것	5	0
4010.36.00	--엔드리스 싱크러너스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 센티미터 초과 198 센티미터 이하인 것	5	0
4010.39.00	--기타	5	5
4011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신품에 한한다)		
4011.10.00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	5	0
4011.20.00	-버스용 또는 화물차용의 것	5	0
4011.30.00	-항공기용의 것	0	0
4011.40.00	-모터싸이클용의 것	0	0
4011.50.00	-자전거용의 것	0	0
4011.6	-기타("헤링본" 또는 이와 유사한 트레드가 있는 것에 한한다)		
4011.61.00	--농경용 또는 임업용 차량 및 기계의 것	5	0
4011.62.00	--건설용 또는 산업용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5	0
4011.63.00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5	0
4011.69.00	--기타	5	0
4011.9	-기타		
4011.92.00	--농경용 또는 임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	5	0
4011.93.00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5	0
4011.94.00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5	0
4011.99.00	--기타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4016.93.00	--개스킷 · 와셔 및 기타 실	5	5
4016.94.00	--보트 또는 도크펜더(팽창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	0
4016.95.00	--기타 팽창성제품	5	0
4016.99.00	--기타	5	5
4017.00.00	경질고무(예: 에보나이트, 각종 형상의 것으로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그 제품	5	0
41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4101	소(버팔로를 포함한다) 또는 마속동물의 원피(생 것 · 염장한 것 · 건조한 것 · 석회처리한 것 · 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에 한하고, 유연처리 · 파치먼트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탈모하거나 스플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101.20.00	-스플릿하지 아니한 전신원피(단순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8 킬로그램 이하, 염처리 후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 또는 생 것 · 습식염장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하였을 때의 중량이 16 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0	0
4101.50.00	-전신원피(16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0	0
4101.90.00	-기타(버트, 벤드 및 벨리를 포함한다)	0	0
4102	면양 또는 어린 양의 원피(생 것 · 염장한 것 · 건조한 것 · 석회처리한 것 · 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에 한하고, 유연처리 · 파치먼트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하며, 탈모하지 아니하거나 스플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류의 주 제 1 호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제외한다)		
4102.10.00	-탈모하지 아니한 것	0	0
4102.2	-탈모한 것		
4102.21.00	--산처리한 것	0	0
4102.29.00	--기타	0	0
4103	기타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에 한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하며, 탈모하거나 스플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이 류의 주 제 1 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제외한다)		
4103.20	-파충류의 것		
4103.20.1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물품(식물성 유연전처리를 제외하고,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5	0
4103.20.90	---기타	0	0
4103.30	-돼지의 것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4012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재생품 또는 중고품에 한한다), 고무제의 솔리드 또는 쿠션타이어 · 타이어트래드 및 타이어플랩		
4012.1	-재생타이어		
4012.11.00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	5	5
4012.12.00	--버스용 또는 화물차용의 것	5	5
4012.13.00	--항공기용의 것	5	5
4012.19.00	--기타	5	5
4012.20.00	-중고 공기타이어	5	5
4012.90.00	-기타	5	0
4013	고무제의 이너튜브		
4013.10.00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 버스 또는 화물차용의 것	5	5
4013.20.00	-자전거용의 것	0	0
4013.90.00	-기타	5	0
4014	고무제의 위생용품 또는 의약용품(젖꼭지를 포함하며, 경질고무 외의 가황한 것에 한하며, 경질고무제의 연결구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4014.10.00	-콘돔	0	0
4014.90.00	-기타	5	0
4015	고무제의 의류와 의류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고무 외의 가황한 것에 한하며, 용도를 불문한다)		
4015.1	-장갑, 벙어리장갑		
4015.11.00	--외과용의 것	5	0
4015.19	--기타		
4015.19.10	---벙어리장갑(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 한 것에 한한다)	5	0
4015.19.90	---기타	5	0
4015.90	-기타		
4015.90.10	---잠수복·웨트슈트와 이와 유사한 의류	5	0
4015.90.2	---다음을 제외한 의류, NSA: (가) X-선 보호용 앞치마, 또는 (나) 기저귀 커버		
4015.90.21	----방사선 차단 슈트·오염 방지 슈트 및 이와 유사한 보호용 의류	5	0
4015.90.29	----기타	10	5
4015.90.90	---기타	0	0
4016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		
4016.10.00	-셀룰라 고무의 것	5	0
4016.9	-기타		
4016.91.00	--바닥깔개와 매트	5	5
4016.92.00	--지우개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4103.30.10	---탈모하고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물품(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5	0
4103.30.90	---기타	0	0
4103.90	-기타		
4103.90.20	---산양의 것	0	0
4103.90.30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의 것	0	0
4103.90.9	---기타		
4103.90.91	----탈모하고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물품(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5	0
4103.90.99	----기타	0	0
4104	소(버팔로를 포함한다) 또는 마속동물의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플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4104.1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4104.11	--스플릿하지 아니한 풀 그레인, 그레인 스플릿		
4104.11.10	---유연전처리한 것	0	0
4104.11.90	---기타	5	0
4104.19	--기타		
4104.19.10	---유연전처리한 것	0	0
4104.19.90	---기타	5	0
4104.4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4104.41.00	--스플릿하지 아니한 풀 그레인, 그레인 스플릿	5	0
4104.49.00	--기타	5	0
4105	면양이나 어린 양의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플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4105.10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4105.10.10	---유연전처리한 것	0	0
4105.10.90	---기타	5	0
4105.30.00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5	0
4106	기타 동물의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플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4106.2	-산양의 것		
4106.21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4106.21.10	---유연전처리한 것	0	0
4106.21.90	---기타	5	0
4106.22.00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5	0
4106.3	-돼지의 것		
4106.31.00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5	0
4106.32.00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5	0
4106.40	-파충류의 것		
4106.40.10	---식물성 유연전처리한 것	0	0
4106.40.90	---기타	5	0
4106.9	-기타		
4106.91.00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5	0
4106.92.00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5	0
4107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한 소(버팔로를 포함한다) 또는 마속동물의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플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 4114 호의 가죽을 제외한다)		
4107.1	-전신원피		
4107.11.00	--스플릿하지 아니한 풀 그레인	5	0
4107.12.00	--그레인 스플릿	5	0
4107.19.00	--기타	5	0
4107.9	-기타(반신의 것을 포함한다)		
4107.91.00	--스플릿하지 아니한 풀 그레인	5	0
4107.92.00	--그레인 스플릿	5	0
4107.99.00	--기타	5	0
4112.00.00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플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 4114 호의 가죽을 제외한다)	5	0
4113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기타 동물의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플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 4114 호의 가죽을 제외한다)		
4113.10.00	-산양의 것	5	0
4113.20.00	-돼지의 것	5	0
4113.30.00	-파충류의 것	5	0
4113.90.00	-기타	5	0
4114	세무가죽(콤비네이션 세무가죽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 메탈라이즈드 레더		
4114.10.00	-세무가죽(콤비네이션 세무가죽을 포함한다)	5	0
4114.20.00	-페이턴트 레더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 메탈라이즈드 레더	5	0
4115	콤퍼지션 레더(가죽 또는 가죽섬유를 기제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슬래브상·쉬트상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의 페어링과 기타의 웨이스트(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죽의 더스트와 분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4115.10.00	-콤퍼지션 레더(가죽 또는 가죽섬유를 기제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톱상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슬래브상·쉬트상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5	0
4115.20.00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의 페어링과 기타의 웨이스트(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죽의 더스트와 분	0	0
42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의 거트의 제품(누에고치의 거트를 제외한다)		
4201.00.00	동물용 마구(고삐줄·끈·무릎받이·재갈·안장용 방석·안장에 다는 주머니·개용 코트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5	0
4202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권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 또는 플라스틱의 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제 또는 벌커나이즈드파이버 또는 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또는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월릿·지갑·지도용케이스·담배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가방·병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		
4202.1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 및 이와 유사한 용기		
4202.11	--외부표면이 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제인 것		
4202.11.10	---서류 가방·손가방 및 이와 유사한 것	5	0
4202.11.90	---기타	5	0
4202.1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4202.12.10	---다음의 물품: (가) 아타세 또는 이그잭큐티브 케이스, (나) 서류가방·손가방과 이와 유사한 것, (다) 슈트케이스, (라) 트렁크	5	0
4202.12.90	---기타	5	0
4202.19.00	--기타	0	0
4202.2	-핸드백(어깨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		
4202.21.00	--외부표면이 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제인 것	5	0
4202.22.00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5	0
4202.29.00	--기타	0	0
4202.3	-통상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어다니는 물품		
4202.31	--외부표면이 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제인 것		
4202.31.10	---다음의 물품: (가) 지갑, (나) 주화 지갑, (다) 키 상자, (라) 흡연용품 케이스, (마) 안경 케이스, (바) 월릿과 월릿퍼스	5	0
4202.31.90	---기타	5	0
4202.32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4202.32.10	---다음의 물품: (가) 지갑, (나) 주화 지갑, (다) 키 상자, (라) 흡연용품 케이스, (마) 안경 케이스, (바) 월릿과 월릿퍼스	5	0
4202.32.90	---기타	0	0
4202.39.00	--기타	0	0
4202.9	-기타		
4202.91	--외부표면이 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제인 것		
4202.91.10	---다음의 물품: (가) 골프가방, (나) 총·리볼버와 피스톨의 케이스와 커버, (다) 펜과 연필 케이스	5	0
4202.91.90	---기타	5	0
4202.92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4202.92.10	---다음의 물품: (가) 골프가방, (나) 총·리볼버와 피스톨의 케이스와 커버, (다) 펜과 연필 케이스	5	0
4202.92.90	---기타	5	0
4202.99.00	--기타	5	0
4203	의류와 의류부속품(가죽제 또는 콤퍼지션 레더제의 것에 한한다)		
4203.10.00	-의류	10	5
4203.2	-장갑, 벙어리장갑		
4203.21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4203.21.10	---벙어리장갑(가죽 및 모피 또는 가죽 및 인조모피의 것)	5	0
4203.21.90	---기타	0	0
4203.29	--기타		
4203.29.10	---벙어리장갑(가죽 및 모피 또는 가죽 및 인조모피의 것)	5	0
4203.29.90	---기타	0	0
4203.30.00	-벨트와 띠	5	0
4203.40	-기타 의류부속품		
4203.40.10	---손목 끈	5	0
4203.40.90	---기타	10	5
4205	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제의 기타 물품		
4205.00.10	---코트·재킷과 이와 유사한 의류의 부분품	10	5
4205.00.20	---기계류 또는 기계식 기기 또는 기타 공업용에 사용하는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제품	5	0
4205.00.90	---기타	5	0
4206.00.00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골드비터 스킨·방광 또는 건의 제품	0	0
43	모피와 인조모피, 이들의 제품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4301	생모피(모피제품용으로 적합한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 4101 호·제 4102 호 또는 제 4103 호에 해당하는 원피를 제외한다)		
4301.10.00	-밍크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0	0
4301.30.0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브로드테일·카라쿨·페르시아 및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중국·몽고 또는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0	0
4301.60.00	-여우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0	0
4301.80.00	-기타 모피(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0	0
4301.90.00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0	0
4302	모피(유연처리 또는 드레스가공한 것으로서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고, 조합하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 재료를 가하지 아니하고 조합한 것에 한하며, 제 4303 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4302.1	-전신모피(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4302.11.00	--밍크의 것	5	0
4302.19	--기타		
4302.19.10	---토끼의 것	5	0
4302.19.90	---기타	5	0
4302.20.00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품(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0
4302.30.00	-전신모피 및 그 조각 또는 절단품(조합한 것에 한한다)	5	0
4303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모피제품		
4303.10.00	-모피의류와 모피의류의 부속품	5	0
4303.90.00	-기타	5	0
4304	인조모피와 그 제품		
4304.00.10	---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만들어진 제품	5	0
4304.00.90	---기타	5	0
44	목재와 그 제품, 목탄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4401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가지, 다발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칩상 또는 삭편상의 목재, 톱밥·목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통나무·브리케트·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1.10.00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가지, 다발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0	0
4401.2	-칩상 또는 삭편상의 목재		
4401.21.00	--침엽수류	5	0
4401.22.00	--활엽수류	5	0
4401.3	-톱밥 및 목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통나무·브리케트·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1.31.00	--목재 펠리트	0	0
4401.39.00	--기타	0	0
4402	목탄(쉘 또는 너트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2.10.00	-대나무제의 것	0	0
4402.90.00	-기타	0	0
4403	원목[껍질 또는 변재(邊材)를 벗긴 것이나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3.10.00	-페인트, 착색, 크레오소트 또는 기타 방부제로 처리한 것	0	0
4403.20.00	-기타(침엽수류의 것에 한한다)	0	0
4403.4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열대산 목재의 것에 한한다)		
4403.41.00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및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0	0
4403.49.00	--기타	0	0
4403.9	-기타		
4403.91.00	--참나무(코커스종)의 것	0	0
4403.92.00	--너도밤나무(파구스종)의 것	0	0
4403.99.00	--기타	0	0
4404	후프우드, 쪼갠말뚝, 뾰족하게 만든 목재의 말뚝류(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을 제외한다), 목재의 봉(지팡이·산류·공구의 자루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깎은 것에 한하며, 선반가공, 휨 가공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칩우드 및 이와 유사한 것		
4404.10.00	-침엽수류	5	0
4404.20.00	-활엽수류	5	0
4405.00.00	목모, 목분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4406	철도 또는 궤도용 침목		
4406.10.00	-주약처리하지 아니한 것	5	0
4406.90.00	-기타	5	0
4407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또는 쪼갠 것,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7.10	-침엽수류		
4407.10.10	---대패질 또는 연마한것	5	0
4407.10.9	---기타		
4407.10.91	----다음의 목재: (가) 레드우드[세콰이어 셈페르비렌스(Sequoia sempervirens)], (나) 웨스턴 레드 시다[튜자 플리카나(Thuja plicata)], (다) 통재를 만들기 위해 절단한 것, (라) 단면적이 450 제곱센티미터 이상의 것	0	0
4407.10.99	----기타	5	0
4407.2	-열대산 목재의 것(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것에 한한다)		
4407.21.00	--마호가니(스웨테니아종)	0	0
4407.22.00	--비롤라(Virola)·임부아(Imbuia) 및 발사(Balsa)	0	0
4407.25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및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4407.25.10	---대패질 또는 연마한 것	5	0
4407.25.90	---기타	5	0
4407.26.00	--화이트라왕(White Lauan)·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및 아란(Alan)	0	0
4407.27	--사펠리(Sapelli)		
4407.27.10	---대패질 또는 연마한 것	5	0
4407.27.90	---기타	0	0
4407.28	--이로코(Iroko)		
4407.28.10	---대패질 또는 연마한 것	5	0
4407.28.90	---기타	0	0
4407.29	--기타		
4407.29.10	---대패질 또는 연마한것	5	0
4407.29.9	---기타		
4407.29.91	----만디오퀘이라(Mandioqueira), 파우 아마렐로(Pau Amarelo), 콰루바(Quaruba) 및 타우아리(Tauari)	5	0
4407.29.99	----기타	0	0
4407.9	-기타		
4407.91	--참나무(코커스종)의 것		
4407.91.10	---대패질 또는 연마한 것	5	0
4407.91.90	---기타	5	0
4407.92.00	--너도밤나무(파구스종)의 것	0	0
4407.93	--단풍나무(아세르종)의 것		
4407.93.10	---대패질 또는 연마한 것	5	0
4407.93.90	---기타	5	0
4407.94	--체리나무(프루누스종)의 것		
4407.94.10	---대패질 또는 연마한 것	5	0
4407.94.90	---기타	5	0
4407.95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종)의 것		
4407.95.10	---대패질 또는 연마한 것	5	0
4407.95.90	---기타	5	0
4407.99	--기타		
4407.99.10	---대패질 또는 연마한것	5	0
4407.99.9	---기타		
4407.99.91	----흑단(디오스피로스종)	0	0
4407.99.99	----기타	5	0
4408	베니어용 단판(적층목재품을 평삭하여 얻어진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 또는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 단판 및 기타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8.10	-침엽수류		
4408.10.1	---적층목재품을 평삭하여 얻어진 베니어용 시트		
4408.10.11	----합판형태의 것	5	0
4408.10.12	----기타[최소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활엽수류의 목재인 것에 한하고, 만디오퀘리아(Mandioqueira), 파우 아마렐로(Pau Amarelo), 콰루바(Quaruba) 또는 타우아리(Tauari)를 제외한다]	5	0
4408.10.13	----기타[최소 한 개의 플라이가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에 한하고, 만디오퀘리아(Mandioqueira), 파우 아마렐로(Pau Amarelo), 콰루바(Quaruba) 또는 타우아리(Tauari)를 제외한다]	0	0
4408.10.19	----기타	5	0
4408.10.90	---기타	5	0
4408.3	-열대산 목재의 것(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것에 한한다)		
4408.31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및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4408.31.1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 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또는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가 최소 한층을 이루는 적층목재품을 평삭하여 얻어진 베니어용 시트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4409	목재(미조립의 쪽마루판용 스트립과 프리즈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홈가공·은촉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 이음가공·구슬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409.10.00	-침엽수류	5	0
4409.2	-활엽수류		
4409.21.00	--대나무제의 것	5	0
4409.29.00	--기타	5	0
4410	파티클보드, 배향성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및 이와 유사한 보드(예: 웨이퍼보드)(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재료의 것에 한하며, 수지 또는 기타의 유기결합제로 응결시킨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10.1	-목재의 것		
4410.11.00	--파티클보드	5	0
4410.12.00	--배향성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5	0
4410.19.00	--기타	5	0
4410.90.00	-기타	5	0
4411	섬유판(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재료의 것에 한하며, 수지 또는 기타 유기물질로서 접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11.1	-중밀도 섬유판(MDF)		
4411.12	--두께가 5 밀리미터 이하인 것		
4411.12.10	---밀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8 그램을 초과하는 것	5	0
4411.12.90	---기타	5	0
4411.13	--두께가 5 밀리미터 초과 9 밀리미터 이하인 것		
4411.13.10	---밀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8 그램을 초과하는 것	5	0
4411.13.90	---기타	5	0
4411.14	---두께가 9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411.14.10	---밀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8 그램을 초과하는 것	5	0
4411.14.90	---기타	5	0
4411.9	-기타		
4411.92.00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8 그램을 초과하는 것	5	0
4411.93.00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5 그램 초과 0.8 그램 이하인 것	5	0
4411.94.00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5 그램 이하인 것	5	0
4412	합판·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		
4412.10	-대나무제의 것		
4412.10.10	---합판	5	0
4412.10.2	---최소 한 개의 층이 파티클 보드로 된 것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4408.31.11	----합판형태의 것	5	0
4408.31.12	----기타[최소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활엽수류의 목재인 것에 한하고,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 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또는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를 포함한다]	5	0
4408.31.19	----기타[최소 한개의 플라이가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 라이트레드메란티(Right Red Meranti) 또는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인 것에 한한다]	0	0
4408.31.90	---기타	5	0
4408.39	--기타		
4408.39.1	---적층목재품을 평상하여 얻어진 베니어용 시트(최소 한 개의 플라이가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에 규정된 열대산 목재인 것에 한한다)		
4408.39.11	----합판형태의 것	5	0
4408.39.12	----기타[최소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활엽수류의 목재인 것에 한하고, 만디오퀘리아(Mandioqueira), 파우 아마렐로(Pau Amarelo), 콰루바(Quaruba) 또는 타우아리(Tauari)를 포함한다]	5	0
4408.39.13	----기타[최소 한 개의 플라이가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에 한하고, 만디오퀘리아(Mandioqueira), 파우 아마렐로(Pau Amarelo), 콰루바(Quaruba) 또는 타우아리(Tauari)를 제외한다]	0	0
4408.39.19	----기타	5	0
4408.39.90	---기타	5	0
4408.90	-기타		
4408.90.1	---적층목재품을 평삭하여 얻어진 베니어용 시트		
4408.90.11	----합판형태의 것	5	0
4408.90.12	----기타[최소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활엽수류의 목재인 것에 한하고, 만디오퀘리아(Mandioqueira), 파우 아마렐로(Pau Amarelo), 콰루바(Quaruba) 또는 타우아리(Tauari)와 최소 한 개의 층이 파티클보드로 된 것은 제외한다]	5	0
4408.90.13	----기타[최소 한 개의 플라이가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에 한하고, 만디오퀘리아(Mandioqueira), 파우 아마렐로(Pau Amarelo), 콰루바(Quaruba) 또는 타우아리(Tauari)와 최소 한 개의 층이 파티클보드로 된 것은 제외한다]	5	0
4408.90.14	----기타(최소 한 개의 층이 파티클보드로 된 것에 한한다)	0	0
4408.90.19	----기타	5	0
4408.90.90	---기타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4412.10.21	----다음의 물품: (가) 최소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활엽수류의 목재인 것(대나무제를 포함한다), (나) 최소 한쪽의 플라이가 이 류의 추가 주 제 1 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5	0
4412.10.29	----기타	0	0
4412.10.30	---기타(최소 한쪽의 플라이가 이 류의 추가 주 제 1 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0	0
4412.10.90	---기타	5	0
4412.3	-기타 합판(각 플라이의 두께가 6 밀리미터 이하의 목재쉬트만으로 구성된 것에 한하며, 대나무제의 것은 제외한다)		
4412.31.00	--최소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5	0
4412.32.00	--기타(최소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활엽수류의 목재인 것에 한한다)	5	0
4412.39.00	--기타	5	0
4412.9	-기타		
4412.94	--블록보드, 라민보드와 배튼보드		
4412.94.2	---최소 한쪽의 플라이가 이 류의 추가 주 제 1 호에 규정된 열대산 목재인 것		
4412.94.21	----다음 목재 중 하나를 포함하는 것: (가) 만디오퀘리아(Mandioqueira), (나) 파우 아메렐로(Pau Amarelo), (다) 콰루바(Quaruba), (라) 타우아리(Tauari)	5	0
4412.94.29	----기타	0	0
4412.94.30	---기타(최소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활엽수류 목재인 것에 한한다)	5	0
4412.94.90	---기타	5	0
4412.99	--기타		
4412.99.2	---최소 한쪽의 플라이가 이 류의 추가 주 제 1 호에 규정된 열대산 목재인 것		
4412.99.21	----최소 한 층이 파티클보드이고 다음 목재 중 하나를 함유한 물품(합판은 제외한다): (가) 만디오퀘이라(Mandioqueria), (나) 파우 아마렐로(Pau Amarelo), (다) 콰루바(Quaruba), (라) 타우아리(Tauari)	0	0
4412.99.22	----다음의 물품, NSA: (가) 최소 한 층이 파티클 보드인 것, (나) 합판	5	0
4412.99.23	----기타(다음 목재 중 하나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가) 만디오퀘이라(Mandioqueria), (나) 파우 아마렐로(Pau Amarelo), (다) 콰루바(Quaruba), (라) 타우아리(Tauari)	5	0
4412.99.29	----기타	0	0
4412.99.3	---기타(최소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침엽수류인 것에 한한다)		
4412.99.31	----다음의 물품: (가) 최소 한 층이 파티클 보드인 것, (나) 합판	5	0
4412.99.39	----기타	5	0
4412.99.40	---기타(한 층이 파티클 보드인 것에 한한다)	0	0
4412.99.9	---기타		
4412.99.91	----합판	5	0
4412.99.99	----기타	5	0
4413.00.00	고밀도화 목재(블록상 · 플레이트상 · 스트립상 또는 프로파일형상의 것에 한한다)	5	0
4414.00.00	목재의 그림틀 · 사진틀 · 거울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5	0
4415	목재의 케이스 · 상자 · 크레이트 · 드럼 및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목재의 케이블드럼, 목재의 페렛 · 박스페렛 및 기타 깔판류, 목재의 페렛칼러		
4415.10.00	-케이스 · 상자 · 크레이트 · 드럼 및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블드럼	5	0
4415.20.00	-페렛, 박스페렛 및 기타 깔판류, 페렛칼러	5	0
4416.00.00	목재의 통 · 배럴 · 배트 · 텁 및 기타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 및 준재를 포함한다)	5	0
4417.00.00	목재의 공구 · 공구의 몸체 · 공구의 손잡이 · 비 또는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 신발의 목제골	0	0
4418	건축용 목재건구와 목공품(셀룰라우드패널 ·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 · 지붕이는 판자를 포함한다)		
4418.10.00	-창, 프랑스 창 및 그들의 틀	5	0
4418.20.00	-문 · 문틀 및 문지방	5	0
4418.40.00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 거푸집널	5	0
4418.50.00	-지붕이는 판자	5	0
4418.60.00	-기둥 및 들보	5	0
4418.7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		
4418.71.00	--모자이크 마루용	5	0
4418.72	--기타(다층인 것에 한한다)		
4418.72.10	---파아켓트패널	5	0
4418.72.90	---기타	5	0
4418.79	--기타		
4418.79.10	---파아켓트패널	5	0
4418.79.90	---기타	5	0
4418.90.00	-기타	5	0
4419.00.00	목재의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4420	마르퀘트리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용품 또는 칼붙이 및 이와 유사한 제품용의 목재 상자와 용기, 목재의 조상과 기타 장식품, 제 94 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목재의 가구		
4420.10.00	-목재의 조상 및 기타 장식품	5	0
4420.90.00	-기타	5	0
4421	기타 목제품		
4421.10.00	-옷걸이	0	0
4421.90.00	-기타	5	0
45	코르크와 그 제품		
4501	천연코르크(조상의 것 또는 단순히 가공한 것에 한한다), 코르크의 웨이스트, 파쇄 · 입상 또는 분쇄한 코르크		
4501.10.00	-천연코르크(조상의 것 또는 단순히 가공한 것에 한한다)	0	0
4501.90.00	-기타	0	0
4502.00.00	천연코르크[외피를 제거한 것 · 거칠게 각을 만든 것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상 · 판상 · 쉬트상이나 스트립상의 것에 한하고, 각이 예리한 마개용 블랭크를 포함한다]	0	0
4503	천연코르크의 제품		
4503.10.00	-마개	0	0
4503.90.00	-기타	0	0
4504	응집코르크(응집제를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응집코르크의 제품		
4504.10.00	-블록 · 판 · 쉬트 및 스트립, 타일(형상을 불문한다), 솔리드실린더(디스크를 포함한다)	5	0
4504.90.00	-기타	5	0
46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4601	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조물재료·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쉬트상의 것에 한하며, 매트류·발 등 최종 제품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601.2	-매트류 및 발(식물성 재료의 것에 한한다)		
4601.21.00	--대나무제의 것	0	0
4601.22.00	--등나무제의 것	0	0
4601.29.00	--기타	0	0
4601.9	-기타		
4601.92.00	--대나무제의 것	0	0
4601.93.00	--등나무제의 것	0	0
4601.94.00	--기타 식물성 재료의 것	0	0
4601.99.00	--기타	0	0
4602	농세공품·지조세공물 및 기타 제품(조물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 또는 제 4601 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수세미제품		
4602.1	-식물성 재료의 것		
4602.11.00	--대나무제의 것	0	0
4602.12.00	--등나무제의 것	0	0
4602.19.00	--기타	0	0
4602.90.00	-기타	0	0
47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및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4701.00.00	기계목재펄프	0	0
4702.00.00	화학목재펄프(용해용의 것에 한한다)	0	0
4703	화학목재펄프(소다펄프 또는 황산펄프에 한하며, 용해용의 것을 제외한다)		
4703.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703.11.00	--침엽수류의 것	0	0
4703.19.00	--활엽수류의 것	0	0
4703.2	-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4703.21.00	--침엽수류의 것	0	0
4703.29.00	--활엽수류의 것	0	0
4704	화학목재펄프(아황산펄프에 한하며, 용해용의 것을 제외한다)		
4704.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704.11.00	--침엽수류의 것	0	0
4704.19.00	--활엽수류의 것	0	0
4704.2	-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4704.21.00	--침엽수류의 것	0	0
4704.29.00	--활엽수류의 것	0	0
4705.00.00	기계적 및 화학적 펄핑공정을 결합하여 얻어진 목재펄프	0	0
4706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4706.10.00	-면린터펄프	0	0
4706.20.00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0	0
4706.30.00	-기타(대나무제의 것에 한한다)	0	0
4706.9	-기타		
4706.91.00	--기계펄프	0	0
4706.92.00	--화학펄프	0	0
4706.93.00	--기계공정과 화학공정의 결합으로 얻어진 것	0	0
4707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4707.10.00	-표백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 또는 판지나 파형지 또는 판지	0	0
4707.20.00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기타의 지 또는 판지(전체를 착색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4707.30.00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 등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지 또는 판지	0	0
4707.90.00	-기타(선별하지 아니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0	0
48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의 제품		
4801	신문용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4801.00.10	---기계공정에 의한 섬유를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그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 퍼센트 이하인 것	5	0
4801.00.20	---기계공정에 의한 섬유가 전 섬유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고 65 퍼센트 미만인 것	5	0
4801.00.3	---기계공정에 의한 섬유가 전 섬유중량의 65 퍼센트 이상인 것		
4801.00.31	----다음의 물품: (가) 중량이 1 제곱미터당 57 그램을 초과하는 것, 또는 (나) 회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5	0
4801.00.39	----기타	0	0
4802	도포하지 아니한 지와 판지(필기용·인쇄용 또는 기타 그래픽용의 것에 한한다), 천공되지 아니한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지[제 4801 호 또는 제 4803 호의 것을 제외하며, 크기는 불문하고 롤상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수제지와 판지		
4802.10.00	-수제지와 판지	0	0
4802.20	-사진감광성, 열 감응성 또는 전자 감광성 지 또는 판지용 기제로 사용되는 지와 판지		
4802.20.2	---디아조타이프지와 판지		
4802.20.21	----다음의 물품: (가)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으로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나)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 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떤 면의 길이도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다)직사각형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면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면의 길이가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5	0
4802.20.22	---주로 화학-기계공정에 의해 얻어진 펄프로부터 생산한 지 또는 판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다음의 것: (가) 중량이 1 제곱미터당 22 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나) 중량이 1 제곱미터당 205 그램을 초과하는 것	5	0
4802.20.29	----기타	5	0
4802.20.3	---중량이 1 제곱미터당 22 그램을 초과하고 1 제곱미터당 205 그램 이하인 물품, NSA		
4802.20.31	----다음의 물품: (가)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으로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떤 면의 길이도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다)직사각형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면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면의 길이가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5	0
4802.20.39	----기타	5	0
4802.20.4	---다음의 물품, NSA: (가) 중량이 1 제곱미터당 22 그램 이하인 것, (나) 중량이 1 제곱미터당 205 그램을 초과하는 것		
4802.20.41	----다음의 물품: (가)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으로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떤 면의 길이도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다) 직사각형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면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면의 길이가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5	0
4802.20.49	----기타	5	0
4802.40	-벽지용의 원지		
4802.40.10	---다음의 물품: (가)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으로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떤 면의 길이도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다)직사각형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면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면의 길이가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5	0
4802.40.20	---화학-기계공정에 의해 얻어진 펄프로 부터 만들어진 지 또는 판지를 함유하는 다음의 물품, NSA: (가) 중량이 1 제곱미터당 22 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나) 중량이 1 제곱미터당 205 그램을 초과하는 것	5	0
4802.40.90	---기타	5	0
4802.5	-기타 지와 판지(기계공정 또는 화학-기계공정에 의해 얻어진 섬유를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그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 퍼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4802.5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미만인 것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4802.54.10	----다음의 물품: (가)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으로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떤 면의 길이도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다) 직사각형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면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면의 길이가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5	0
4802.54.2	---주로 화학-기계공정에 의해 얻어진 펄프로부터 만들어진 섬유의 함유량이 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NSA		
4802.54.21	----다음의 물품: (가) 여러 층의 지와 판지, (나) 중량이 1 제곱미터당 22 그램을 초과하는 물품	5	0
4802.54.29	----기타	5	0
4802.54.90	---기타	5	0
4802.55	--롤상의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인 것		
4802.55.10	---폭이 15 센티미터 이하인 것	5	0
4802.55.90	---기타	5	0
4802.56	--쉬트상의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이고,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면이 43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다른 한 면은 297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4802.56.10	---다음의 물품: (가) 스트립상의 것으로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떤 면의 길이도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다)직사각형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면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면의 길이가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5	0
4802.56.90	---기타	5	0
4802.57	--기타의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인 것		
4802.57.10	---다음의 물품: (가)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으로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떤 면의 길이도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다) 직사각형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면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면의 길이가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5	0
4802.57.90	---기타	5	0
4802.58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4802.58.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5 그램 이하인 것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4802.58.11	----다음의 물품: (가)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으로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떤 면의 길이도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다) 직사각형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면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면의 길이가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5	0
4802.58.12	----주로 화학-기계공정에 의해 얻어진 펄프로 부터 제조된 섬유의 함유량이 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NSA	5	0
4802.58.19	----기타	5	0
4802.58.9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5 그램을 초과하는 것		
4802.58.91	----다음의 물품: (가)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으로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떤 면의 길이도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다) 직사각형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면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면의 길이가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5	0
4802.58.92	----다음의 물품, NSA: (가) 여러 층의 지와 판지, (나) 화학-기계공정에 의해 얻어진 펄프로 부터 제조된 섬유의 함유량이 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5	0
4802.58.99	----기타	5	0
4802.6	-기타 지와 판지(기계공정 또는 화학-기계공정에 의해 얻어진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802.61	--롤상의 것		
4802.61.10	---폭이 15 센티미터 이하인 것	5	0
4802.61.2	---기계공정에 의해 얻어진 섬유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그러한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 퍼센트 이하인 물품(제 4802.61.4 호 또는 제 4802.61.5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NSA		
4802.61.21	----중량이 1 제곱미터당 150 그램 이하인 것	5	0
4802.61.22	----중량이 1 제곱미터당 150 그램을 초과하고 205 그램 이하인 것	5	0
4802.61.29	----기타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4802.61.30	---기계공정에 의해 얻어진 섬유의 중량이 전 섬유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다음의 지(제 4802.61.4 호의 신문용지는 제외한다): (가) 씨오비비(Cobb)방법에 따라 측정한 1 분 동안의 수분흡수율이 1 제곱미터당 45 그램 이상인 것, (나) 기계 우드펄프의 함유량이 70 퍼센트 이상인 것, 그리고 (다)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62 그램 이하인 것	0	0
4802.61.4	---롤상의 것으로서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신문용지		
4802.61.41	----기계공정에 의해 얻어진 섬유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그러한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 퍼센트 이하인 것	5	0
4802.61.42	----기계공정에 의해 얻어진 섬유가 전 섬유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고 65 퍼센트 미만인 것	5	0
4802.61.43	----기계공정에 의해 얻어진 섬유가 전 섬유중량의 65 퍼센트 이상인 다음의 것: (가) 1 제곱미터당 중량이 57 그램을 초과하는것, 또는 (나) 회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5	0
4802.61.49	----기타	0	0
4802.61.5	---주로 화학-기계공정에 의해 얻어진 펄프로부터 만들어진 물품, NSA		
4802.61.51	----다층 지와 판지(중량이 1 제곱미터당 205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0
4802.61.52	----다층 지와 판지(중량이 1 제곱미터당 205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	0
4802.61.53	----다음의 물품, NSA: (가) 중량이 1 제곱미터당 22 그램 이하인 것, (나) 중량이 1 제곱미터당 205 그램을 초과하는 것	5	0
4802.61.59	----기타	5	0
4802.61.90	---기타	5	0
4802.62	--쉬트상의 것으로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면이 435 밀리미터 이하이고, 다른 한 면은 297 밀리미터 이하인 것		
4802.62.10	---다음의 물품: (가)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으로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떤 면의 길이도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다) 직사각형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면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면의 길이가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4802.62.2	---기계공정에 의해 얻어진 섬유를 함유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그러한 섬유가 전 섬유중량의 10 퍼센트 이하인 것(제 4802.62.4 호 또는 제 4802.62.5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802.62.21	----중량이 1 제곱미터당 150 그램 이하인 것	5	0
4802.62.22	----중량이 1 제곱미터당 150 그램을 초과하고 205 그램 이하인 것	5	0
4802.62.29	----기타	5	0
4802.62.30	---기계공정에 의해 얻어진 섬유의 중량이 총 섬유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다음의 지(제 4802.62.4 호의 신문용지는 제외한다): (가) 씨오비비(Cobb)방법에 따라 측정한 1 분 동안의 수분흡수율이 1 제곱미터당 45 그램 이상인 것, (나) 기계 우드펄프의 함유량이 70 퍼센트 이상인 것, 그리고 (다)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62 그램 이하인 것	0	0
4802.62.4	---신문용지, NSA		
4802.62.41	----기계공정에 의해 얻어진 섬유를 함유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그러한 섬유가 전 섬유중량의 10 퍼센트 이하인 것	5	0
4802.62.42	----기계공정에 의해 얻어진 섬유가 전 섬유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고 65 퍼센트 미만인 것	5	0
4802.62.43	----기계공정에 의해 얻어진 섬유가 전 섬유중량의 65 퍼센트 이상인 다음의 것: (가) 1 제곱미터당 중량이 57 그램을 초과하는것, 또는 (나) 회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5	0
4802.62.49	----기타	0	0
4802.62.5	---주로 화학-기계공정에 의해 얻어진 펄프로부터 만들어진 것, NSA		
4802.62.51	----다층 지와 판지(중량이 1 제곱미터당 205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0
4802.62.52	----다층 지와 판지(중량이 1 제곱미터당 205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	0
4802.62.53	----다음의 물품, NSA: (가) 중량이 1 제곱미터당 22 그램 이하인 것, (나) 중량이 1 제곱미터당 205 그램을 초과하는 것	5	0
4802.62.59	----기타	5	0
4802.62.90	---기타	5	0
4802.69	--기타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4802.69.10	---다음의 물품: (가)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으로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떤 면의 길이도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다) 직사각형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면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면의 길이가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5	0
4802.69.2	---기계공정에 의해 얻어진 섬유를 함유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그러한 섬유가 전 섬유중량의 10 퍼센트 이하인 것(제 4802.69.4 호 또는 제 4802.69.5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802.69.21	----중량이 1 제곱미터당 150 그램 이하인 것	5	0
4802.69.22	----중량이 1 제곱미터당 150 그램을 초과하고 205 그램 이하인 것	5	0
4802.69.29	----기타	5	0
4802.69.30	---기계공정에 의해 얻어진 섬유의 중량이 전 섬유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다음의 지(제 4802.62.4 호의 신문용지는 제외한다): (가) 씨오비비(Cobb)방법에 따라 측정한 1 분 동안의 수분흡수율이 1 제곱미터당 45 그램 이상인 것, (나) 기계 우드펄프의 함유량이 70 퍼센트 이상인 것, 그리고 (다)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62 그램 이하인 것	0	0
4802.69.4	---신문용지, NSA		
4802.69.41	----기계공정에 의해 얻어진 섬유를 함유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그러한 섬유가 전 섬유중량의 10 퍼센트 이하인 것	5	0
4802.69.42	----기계공정에 의해 얻어진 섬유가 전 섬유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고 65 퍼센트 미만인 것	5	0
4802.69.43	----기계공정에 의해 얻어진 섬유가 전 섬유중량의 65 퍼센트 이상인 다음의 것: (가) 1 제곱미터당 중량이 57 그램을 초과하는 것, 또는 (나) 회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5	0
4802.69.49	----기타	0	0
4802.69.5	---주로 화학-기계적 공정에 의해 얻어진 펄프로부터 만들어진 물품, NSA		
4802.69.51	----다층 지와 판지(중량이 1 제곱미터당 205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0
4802.69.52	----다층 지와 판지(중량이 1 제곱미터당 205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	0
4802.69.53	----다음의 물품, NSA: (가)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2 그램 이하인 것, (나)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5 그램을 초과하는 것	5	0
4802.69.59	----기타	5	0
4802.69.90	---기타	5	0
4803	화장지 또는 안면용 티슈스톡·타월 또는 냅킨스톡 및 이와 유사한 가정용 또는 위생용의 지·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축유한 것·압형한 것·천공한 것·표면착색한 것·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롤상의 것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4803.00.10	---압형 또는 천공한 것으로서 중량이 1 제곱미터당 22 그램을 초과하는 것	5	0
4803.00.90	---기타	5	0
4804	도포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와 판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하며, 제 4802 호 또는 제 4803 호의 것을 제외한다)		
4804.1	-크라프트 라이너		
4804.1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804.11.1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5 그램 이하인 것	5	0
4804.11.90	---기타	5	0
4804.19	--기타		
4804.19.1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5 그램 이하인 것	5	0
4804.19.90	---기타	5	0
4804.2	-지대용 크라프트지		
4804.21.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5	0
4804.29.00	--기타	5	0
4804.3	-기타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4804.31.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5	0
4804.39.00	--기타	5	0
4804.4	-기타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고 225 그램 미만인 것에 한한다)		
4804.4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804.41.1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5 그램 이하인 것	5	0
4804.41.90	---기타	5	0
4804.42	--소지상태에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의해 얻어진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9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4804.42.1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5 그램 이하인 것	5	0
4804.42.90	---기타	5	0
4804.49	--기타		
4804.49.1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5 그램 이하인 것	5	0
4804.49.90	---기타	5	0
4804.5	-기타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 제곱미터당 중량이 225 그램 이상인 것에 한한다)		
4804.51.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4804.52.00	--소지상태에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의해 얻어진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9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5	0
4804.59.00	--기타	5	0
4805	기타의 도포하지 아니한 지와 판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하며,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 이상의 가공이나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805.1	-후로팅지		
4805.11	--반화학 후로팅지		
4805.11.1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5 그램 이하인 것	5	0
4805.11.90	---기타	5	0
4805.12	--스트로 후로팅지		
4805.12.1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30 그램 이상 205 그램 이하인 것	5	0
4805.12.9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5 그램을 초과하는 것	5	0
4805.19	--기타		
4805.19.10	---다층의 지 또는 판지의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5 그램 이하인 것	5	0
4805.19.20	---다음의 물품: (가)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2 그램 이하인 것, (나)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5 그램 이상인 것	5	0
4805.19.90	---기타	5	0
4805.2	-테스트라이너(재생라이너판)		
4805.2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4805.24.10	---다층의 지와 판지	5	0
4805.24.9	---기타		
4805.24.9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2 그램 이하인 것	5	0
4805.24.99	----기타	5	0
4805.25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4805.25.1	---여러 층의 지와 판지		
4805.25.1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5 그램 이하인 것	5	0
4805.25.19	----기타	5	0
4805.25.9	---기타		
4805.25.9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5 그램 이하인 것	5	0
4805.25.99	----기타	5	0
4805.30.00	-아황산포장지	5	0
4805.40.00	-여과지와 판지	5	0
4805.50.00	-펠트지와 판지	0	0
4805.9	-기타		
4805.9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4805.91.10	---다층의 지와 판지	5	0
4805.91.9	---기타		
4805.91.9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2 그램 이하인 것	5	0
4805.91.99	----기타	5	0
4805.9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초과 225 그램 미만인 것		
4805.92.1	---다층의 지와 판지		
4805.92.1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초과 205 그램 이하인것	5	0
4805.92.19	----기타	5	0
4805.92.9	---기타		
4805.92.9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초과 205 그램 이하인것	5	0
4805.92.92	----다음의 물품, NSA: (가) 카턴보드와 보드지(마분지를 포함한다), (나) 컨테이너보드(크라프트지를 제외한다)	5	0
4805.92.99	----기타	5	0
4805.93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25 그램 이상인 것		
4805.93.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	5	0
4805.93.9	---기타		
4805.93.91	----다음의 물품: (가) 카턴보드와 보드지(마분지를 포함한다), (나) 컨테이너보드(크라프트지를 제외한다)	5	0
4805.93.99	----기타	5	0
4806	황산지 · 내지지 · 트래싱지 및 그라신지와 기타의 투명광택지 또는 반투명 광택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4806.10.00	-황산지	0	0
4806.20.00	-내지지	0	0
4806.30.00	-트래싱지	0	0
4806.40.00	-그라신지와 기타의 투명광택지 또는 반투명광택지	0	0
4807.00.00	겹붙인 지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한 것을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4808	파형(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축유 · 압형 또는 천공한 지와 판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하며, 제 4803 호의 것을 제외한다)		
4808.10	-파형의 지와 판지(천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808.10.10	---압형 또는 천공한 것으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5 그램 이하인 것	5	0
4808.10.90	---기타	0	0
4808.40	-크라프트지(축유한 것으로서 압형 또는 천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808.40.10	---압형 또는 천공한 것으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5 그램 이하인 것	5	0
4808.40.90	---기타	0	0
4808.90	-기타		
4808.90.10	---압형 또는 천공한 것으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5 그램 이하인 것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4808.90.90	---기타	0	0
4809	카본지·셀프복사지 및 기타의 복사 또는 전사지(등사원지 또는 오프세트플레이트로 사용하는 도포지 또는 침투지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4809.20.00	-셀프복사지	5	0
4809.90	-기타		
4809.90.10	---다음의 물품: (가) 롤상의 승화전사지로 폭이 0.9 미터 이상인 것, (나) 이미지전사공정에 따라 문서의 복사를 위해 사용하는 비감광성으로 조제된 포지티브 전송매체용의 것	0	0
4809.90.90	---기타	5	0
4810	한면 또는 양면을 도포한 지와 판지[결합재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카오린(차이나 클레이) 또는 기타 무기물질로 도포한 것(기타 다른 물질로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표면착색·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크기는 불문하고 롤상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4810.1	-필기용·인쇄용 또는 기타 그래픽용의 지와 판지(기계공정 또는 화학-기계공정에 의해 얻어진 섬유를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그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 퍼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4810.13	--롤상의 것		
4810.13.10	---캐스트코트지와 판지로서 기계공정에 의해 얻어진 섬유를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 퍼센트 이하이며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롤상의 것	0	0
4810.13.2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4810.13.21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것	5	0
4810.13.29	----기타	5	0
4810.13.90	---기타	5	5
4810.14	--쉬트상의 것으로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면이 43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다른 한 면은 297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4810.14.10	---캐스트코트지와 판지로서 기계공정에 의해 얻어진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 섬유중량이 전 섬유중량의 10 퍼센트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의 형태의 것: (가) 스트립 상의 것으로서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면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면은 1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4810.14.2	---다음의 물품, NSA: (가) 스트립 상의 것으로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면의 길이도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다) 직사각형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면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면의 길이가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4810.14.21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것	5	0
4810.14.29	----기타	5	0
4810.14.90	---기타	5	0
4810.19	--기타		
4810.19.10	---캐스트코트지와 판지로서 기계공정에 의해 얻어진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 퍼센트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의 형태의 것: (가) 스트립 상의 것으로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나)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면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면의 길이가 1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4810.19.2	---다음의 물품, NSA: (가) 스트립 상의 것으로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면의 길이도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다) 직사각형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면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면의 길이가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4810.19.21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것	5	0
4810.19.29	----기타	5	0
4810.19.90	---기타	5	5
4810.2	-필기용·인쇄용 또는 기타 그래픽용의 지와 판지(기계공정 또는 화학-기계공정에 의해 얻어진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810.22	--경량(輕量)의 도포한 지		
4810.22.20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물품으로서 다음의 것: (가) 롤 또는 스트립 상의 것으로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면의 길이도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다)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면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면의 길이가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4810.32.00	--소지상태에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의해 얻어진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95 퍼센트를 초과하며,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5	0
4810.39.00	--기타	5	0
4810.9	-기타의 지와 판지		
4810.92.00	--여러 겹의 것	5	0
4810.99.00	--기타	5	5
4811	지 · 판지 · 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크기는 불문하고 롤상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쉬트상의 것으로서 도포 · 침투 · 피복 · 표면착색 · 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것에 한하며, 제 4803 호 · 제 4809 호 또는 제 48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4811.10.00	-타르 · 역청물질 또는 아스팔트를 가한 지와 판지	5	0
4811.4	-접착지와 판지		
4811.41	--셀프접착지		
4811.41.10	---다음의 물품: (가)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으로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느 면의 길이도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다) 직사각형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면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면의 길이가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5	0
4811.41.90	---기타	5	0
4811.49	--기타		
4811.49.10	---다음의 물품: (가)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으로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느 면의 길이도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다) 직사각형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면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면의 길이가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5	0
4811.49.20	---전사지, NSA	0	0
4811.49.90	---기타	5	0
4811.5	-플라스틱으로 도포 · 침투 또는 피복한 지와 판지(접착제를 제외한다)		
4811.51.00	--표백한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5	0
4811.59	--기타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4810.22.30	---다음의 물품, NSA: (가) 롤 또는 스트립 상의 것으로서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느 면의 길이도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다)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면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면의 길이가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5	0
4810.22.90	---기타	5	0
4810.29	--기타		
4810.29.10	---캐스트코트지와 판지로서 기계공정에 의해 얻어진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러한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 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다음의 것: (가)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으로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면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면의 길이가 1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쉬트의 것	0	0
4810.29.20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물품으로서 다음의 것, NSA: (가) 롤 또는 스트립 상의 것으로서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느 면의 길이도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다)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면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면의 길이가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5	0
4810.29.30	---다음의 물품, NSA: (가) 롤 또는 스트립 상의 것으로서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느 면의 길이도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다)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면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면의 길이가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5	0
4810.29.90	---기타	5	5
4810.3	-크라프트지와 판지(필기용 · 인쇄용 또는 기타 그래픽용의 것을 제외한다)		
4810.31.00	--소지상태에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의해 얻어진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95 퍼센트를 초과하며,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4811.59.10	---다음의 물품: (가)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으로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느 면의 길이도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다)직사각형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면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면의 길이가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5	0
4811.59.20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깔개(적합한 크기로 절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0
4811.59.90	---기타	5	0
4811.60.00	-왁스·파라핀왁스·스테아린·유 또는 글리세롤을 도포·침투 또는 피복한 지와 판지	5	0
4811.90	-기타의 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		
4811.90.10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깔개(적합한 크기로 절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0
4811.90.20	---시험용 종이와 판지(진단용 시약지 또는 판지는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것: (가)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으로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느 면의 길이도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다)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면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면의 길이가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0	0
4811.90.30	---다음의 물품, NSA: (가)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으로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느 면의 길이도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다)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면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면의 길이가 1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5	0
4811.90.40	---다음의 물품[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으로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면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면의 길이가 1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가) 캐스트코트지와 판지, (나) 에나멜 블로팅지와 판지, (다) 코팅된 플록, 대리석 및 가죽무늬 종이, (라) 시험용 종이와 판지, NSA, (마) 양피지와 판지, 내지지와 판지 및 이들의 모조품 및 광택의 투명지(도포한 지와 판지는 제외한다)	0	0
4811.90.90	---기타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4812.00.00	제지용 펄프제의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및 필터플레이트	0	0
4813	궐련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하거나, 소책자상 또는 튜브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813.10.00	-소책자상 또는 튜브상의 것	0	0
4813.20.00	-폭이 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롤상의 것	0	0
4813.90.00	-기타	0	0
4814	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 창용 투명지		
4814.20.00	-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표면에 그레인한 것·압형한 것·착색한 것·디자인인쇄한 것 또는 기타 모양으로 장식한 플라스틱층으로 도포 또는 피복한 지로 된 것에 한한다)	5	0
4814.90.00	-기타	5	0
4816	카본지·셀프복사지 및 기타의 복사 또는 전사지(제 4809 호의 것을 제외한다)·지제의 등사원지 및 오프세트플레이트(상자에 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816.20.00	-셀프복사지	5	0
4816.90	-기타		
4816.90.10	---이미지전사공정에 따라 문서의 복사를 위해 사용하는 비감광성으로 조제된 포지티브 전송매체용의 것	0	0
4816.90.90	---기타	5	0
4817	지 또는 판지제의 봉투·봉함엽서·우편엽서 및 통신용 카드, 지 또는 판지제의 상자·낭대 및 필기첩(안에 지제 문구류가 있는 것에 한한다)		
4817.10.00	-봉투	5	0
4817.20.00	-봉함엽서·우편엽서 및 통신용카드	5	0
4817.30.00	-지 또는 판지제의 상자·낭대 및 필기첩(안에 지제 문구류가 있는 것에 한한다)	5	0
4818	화장지 및 이와 유사한 지·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가정용 또는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 센티미터 이하인 롤상의 것 또는 특정의 크기나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 손수건·크렌싱티슈·타올·책상보·서비에트·베드시트 및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 또는 병원용품·의류 및 의류부속품(제지용 펄프·지제·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로 만든 것에 한한다)		
4818.10.00	-화장지	5	0
4818.20.00	-손수건·크렌싱티슈 또는 안면용 화장지 및 타올	5	0
4818.30.00	-책상보 및 서비에트	5	0
4818.50.00	-의류와 의류의 부속품	5	0
4818.90.00	-기타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4819	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제의 상자·포장대 및 기타 포장용기, 지 또는 판지제의 서류상자·서류받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4819.10.00	-지제 또는 판지제의 상자류(골판지제의 것에 한한다)	5	0
4819.20.00	-지제 또는 판지제의 접는 상자류(골판지제의 것을 제외한다)	5	0
4819.30.00	-바닥의 폭이 40 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	5	0
4819.40.00	-기타 포장대(콘을 포함한다)	5	0
4819.50.00	-기타의 포장용기(레코드 스리브를 포함한다)	5	0
4819.60.00	-서류상자·서류받침·보관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5	0
4820	지 또는 판지제의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연습장·흡취지장·바인더(예: 루스리프 등)·홀더·서철표지·각종 사무용 양식·삽입식 카본세트 및 기타 문구류, 지 또는 판지제의 견본용 또는 수집용의 앨범과 책커버		
4820.10.00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 및 이와 유사한 물품	5	0
4820.20	-연습장		
4820.20.10	---인쇄된 텍스트 및 채울수 있는 공란이 있는 연습장	0	0
4820.20.90	---기타	5	0
4820.30.00	-바인더(책표지를 제외한다)·홀더 및 서철표지	5	0
4820.40.00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삽입식 카본세트	5	0
4820.50.00	-견본용 또는 수집용의 앨범	5	0
4820.90.00	-기타	5	0
4821	지 또는 판지제의 각종 레이블(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821.10.00	-인쇄한 것	5	0
4821.90.00	-기타	5	0
4822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제의 보빈·스풀·롭 및 이와 유사한 권취용품(천공 또는 경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822.10.00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데 사용하는 것	0	0
4822.90.00	-기타	0	0
4823	기타의 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특정한 크기 또는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 제지용 펄프·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의 기타 제품		
4823.20.00	-여과지와 판지	5	0
4823.40.00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쉬트 및 다이알	5	0
4823.6	-지 또는 판지제의 쟁반·접시·플레이트·컵 및 이와 유사한 것		
4823.61.00	--대나무제의 것	5	0
4823.69.00	--기타	5	0
4823.70.00	-제지용 펄프제의 몰드 또는 압형한 제품	5	0
4823.90	-기타		
4823.90.10	---다음의 물품: (가) 무균지(무균지로 만든 제품류는 제외한다), (나) 여과지의 필터, (다) 모노타이프지, (라) 과일 포장지, (마) 자카드 직기와 이와 유사한 기계용의 천공 카드	0	0
4823.90.20	---기타의 지와 판지로서 필기용·인쇄용 또는 기타 그래픽용의 것	5	0
4823.90.3	---도포되지 않은 크라프트지와 판지(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으로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제 4823.90.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4823.90.31	----크라프트 라이너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5 그램 이하의 것	5	0
4823.90.32	----크라프트 라이너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5 그램을 초과하는 것	5	0
4823.90.33	----지대용 크라프트지(표백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0
4823.90.34	----기타의 지대용 크라프트지	5	0
4823.90.35	----크라프트 지와 판지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5 그램 이하인 것, NSA	5	0
4823.90.36	----크라프트지와 판지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5 그램 초과 225 그램 미만인것으로서 다음의 것, NSA: (가) 표백하지 아니한 것, (나)소지상태에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의해 얻어진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9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5	0
4823.90.37	----크라프트지와 판지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5 그램 초과 225 그램 미만인 것, NSA	5	0
4823.90.38	----크라프트지와 판지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25 그램 이상이며, 소지상태에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의해 얻어진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9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NSA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4823.90.81	----압형 또는 천공 여부를 불문하고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5 그램 이하인 지와 판지로서 다음의 것: (가) 파형지 및 판지, (나) 축유한 크라프트지	5	0
4823.90.82	----압형 또는 천공한 기타의 지와 판지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5 그램 이하인 것	5	0
4823.90.89	----기타	0	0
4823.90.90	---기타	5	0
49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도면		
4901	인쇄서적 · 소책자 · 리플릿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901.10.00	-단매의 것(접어포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4901.9	-기타		
4901.91.00	--사전 · 백과사전 및 이들의 분할 연속물	0	0
4901.99	--기타		
4901.99.10	---호주 전화번호부와 호주 시간표	5	0
4901.99.90	---기타	0	0
4902	신문 · 잡지 및 정기간행물(그림이 있는 것이거나 광고선전물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902.10.00	-1 주에 4 회 이상 간행되는 것	0	0
4902.90.00	-기타	0	0
4903.00.00	아동용의 그림책 또는 습화책	0	0
4904.00.00	악보(인쇄 또는 수제의 것으로서 제본되었거나 그림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4905	지도 및 해도 또는 이와 유사한 각종 차트(제본한 것 · 벽걸이용의 것 · 지형도 및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에 한한다)		
4905.10.00	-지구의	0	0
4905.9	-기타		
4905.91.00	--책자로 된 것	0	0
4905.99.00	--기타	0	0
4906.00.00	설계도와 도안(건축용, 공학용, 공업용, 상업용, 지형학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의 원도에 한한다), 육필책자, 이들을 감광지 및 카본지에 사진복사한 것	0	0
4907	사용하지 아니한 우표 · 수입인지 또는 이와 유사한 스탬프(해당국에서 통용 또는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에 한한다), 스탬프를 압인한 지, 지폐, 수표, 주식 · 주권 또는 채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4907.00.10	---스탬프와 지폐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4823.90.39	----기타	5	0
4823.90.4	---기타 도포되지 않은 지와 판지(이 류의 추가 주 제 6 호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가공이나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으로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제 4823.90.5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823.90.41	----반화학 후로팅지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5 그램 이하인 것	5	0
4823.90.42	----반화학 후로팅지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5 그램을 초과하는 것	5	0
4823.90.43	----적층한 지와 판지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5 그램 이하인 것	5	0
4823.90.44	----적층한 지와 판지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5 그램을 초과하는 것	5	0
4823.90.45	----아황산포장지	5	0
4823.90.46	----펠트지와 판지	0	0
4823.90.5	---기타 도포되지 않은 지와 판지(이 류의 추가 주 제 6 호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가공이나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으로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제 4823.90.4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823.90.5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2 그램 이하인 것	5	0
4823.90.5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2 그램 초과 205 그램 이하인 것	5	0
4823.90.53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5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다음의 것: (가) 카턴보드 및 보드지(마분지를 포함한다), (나) 컨테이너보드(크라프트지를 제외한다)	5	0
4823.90.59	----기타	5	0
4823.90.60	---황산지 · 내지지 · 트래싱지 및 그라신지와 기타의 투명광택지 또는 반투명 광택지(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으로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0	0
4823.90.70	---겹붙인 지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36 센티미터 이하인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에 한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한 것을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4823.90.8	---제 4803 호에 기술된 종류의 지를 제외한 파형(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축유, 압형 또는 천공한 지와 판지(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으로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4907.00.90	---기타	5	0
4908	전사지(디칼커매니어)		
4908.10.00	-전사지(디칼커매니어)로서 유리화 할 수 있는 것	5	0
4908.90.00	-기타	5	0
4909.00.00	인쇄된 엽서 또는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 또는 안내용의 것으로서 그림·봉투 또는 장식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	0
4910.00.00	캘린더(종류를 불문하고, 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5	0
4911	기타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4911.10	-광고선전물·상업용 카다로그 및 이와 유사한 것		
4911.10.10	---교육적·과학적 또는 문화적 특성의 시각 또는 청각용의 카탈로그	0	0
4911.10.90	---기타	5	0
4911.9	-기타		
4911.91.00	--서화·디자인 및 사진	5	0
4911.99.00	--기타	5	0
50	견		
5001.00.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것에 한한다)	0	0
5002.00.00	생사(꼰것을 제외한다)	0	0
5003.00.00	견웨이스트(생사를 뽑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누에고치, 사웨이스트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0	0
5004.00.00	견사(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0	0
5005.00.00	견방사(견웨이스트의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0	0
5006.00.00	견사 및 견방사(견웨이스트의 것과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누에의 거트	0	0
5007	직물(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에 한한다)		
5007.10	-견 노일직물		
5007.10.10	---인조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0 퍼센트 이상인 것(날염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5	0
5007.10.90	---기타	0	0
5007.20.00	-기타 직물로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견 노일은 제외한다)	0	0
5007.90	-기타 직물		
5007.90.10	---인조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0 퍼센트 이상인 것	5	0
5007.90.90	---기타	0	0
51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 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5101	양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5101.1	-그리지(폴리스워시한 양모를 포함한다)		
5101.11.00	--깍은 양모	0	0
5101.19.00	--기타	0	0
5101.2	-탈지한 것(탄화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5101.21.00	--깍은 양모	0	0
5101.29.00	--기타	0	0
5101.30.00	-탄화처리한 것	0	0
5102	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5102.1	-섬수모		
5102.11.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0	0
5102.19.00	--기타	0	0
5102.20.00	-조수모	0	0
5103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웨이스트(사웨이스트를 포함하며, 가아넷스톡을 제외한다)		
5103.10.00	-양모 또는 섬수모의 노일	0	0
5103.20.00	-양모 또는 섬수모의 기타 웨이스트	0	0
5103.30.00	-조수모의 웨이스트	0	0
5104.00.00	양모 또는 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가아넷스톡	0	0
5105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하며, 코움한 단편상의 양모를 포함한다)		
5105.10.00	-카드한 양모	0	0
5105.2	-울톱과 기타 코움한 양모		
5105.21.00	--코움한 양모(단편상의 것에 한한다)	0	0
5105.29.00	--기타	0	0
5105.3	-섬수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한다)		
5105.31.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0	0
5105.39.00	--기타	0	0
5105.40.00	-조수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한다)	0	0
5106	카드한 양모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5106.10.00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5	0
5106.20.00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미만인 것	5	0
5107	코움한 양모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5107.10.00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5	0
5107.20.00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미만인 것	5	0
5108	섬수모사(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5108.10.00	-카드한 것	5	0
5108.20.00	-코움한 것	5	0
5109	양모사 또는 섬수모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5109.10.00	-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5	0
5109.90.00	-기타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5110.00.00	조수모사 또는 마모사(짐프한 마모사를 포함하며, 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	0
5111	직물(카드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에 한한다)		
5111.1	-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5111.11.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300 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5	0
5111.19.00	--기타	5	0
5111.20.0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의 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5	0
5111.30.0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의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5	0
5111.90.00	-기타	5	0
5112	직물(코움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에 한한다)		
5112.1	-양모 또는 섬모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5112.11.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5	0
5112.19.00	--기타	5	0
5112.20.0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의 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5	0
5112.30.0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의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5	0
5112.90.00	-기타	5	0
5113.00.00	직물(조수모 또는 마모의 것에 한한다)	5	0
52	면		
5201.00.00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0	0
5202	면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5202.10.00	-사웨이스트(실의 웨이스트를 포함한다)	0	0
5202.9	-기타		
5202.91.00	--가아넷스톡	0	0
5202.99.00	--기타	0	0
5203.00.00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한다)	0	0
5204	면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204.1	-소매용이 아닌 것		
5204.11.00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5	0
5204.19.00	--기타	5	0
5204.20.00	-소매용의 것	5	0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5205.1	-단사(코움하지 아니한 섬유의 것에 한한다)		
5205.11	--714.29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5205.11.10	---20, 000 데시텍스 이상의 것	5	0
5205.11.90	---기타	5	0
5205.12.00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5	0
5205.13.00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5	0
5205.14.00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5	0
5205.15.00	--125 데시텍스 미만의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5	0
5205.2	-단사(코움한 섬유의 것에 한한다)		
5205.21	--714.29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5205.21.10	---20, 000 데시텍스 이상의 것	5	0
5205.21.90	---기타	5	0
5205.22.00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5	0
5205.23.00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5	0
5205.24.00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5	0
5205.26.00	--125 데시텍스 미만 106.38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번수 80 수 초과 94 수 이하)	5	0
5205.27.00	--106.38 데시텍스 미만 83.33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94 수 초과 120 수 이하)	5	0
5205.28.00	--83.33 데시텍스 미만의 것(미터식 번수 120 수 초과)	5	0
5205.3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코움하지 아니한 섬유의 것에 한한다)		
5205.3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5205.31.10	---단사당 20, 000 데시텍스 이상의 것	5	0
5205.31.90	---기타	5	0
5205.32.00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5	0
5205.33.00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5	0
5205.34.00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5	0
5205.35.00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5	0
5205.4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코움한 섬유의 것에 한한다)		
5205.4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5205.41.10	---단사당 20, 000 데시텍스 이상의 것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5205.41.90	---기타	5	0
5205.42.00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5	0
5205.43.00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5	0
5205.44.00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5	0
5205.46.00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 106.38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94 수 이하)	5	0
5205.47.00	--구성하는 단사가 106.38 데시텍스 미만 83.33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94 수 초과 120 수 이하)	5	0
5205.48.00	--구성하는 단사가 83.33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20 수 초과)	5	0
5206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5206.1	-단사(코움하지 아니한 섬유의 것에 한한다)		
5206.11	--714.29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5206.11.10	---20, 000 데시텍스 이상의 것	5	0
5206.11.90	---기타	5	0
5206.12.00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5	0
5206.13.00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5	0
5206.14.00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5	0
5206.15.00	--125 데시텍스 미만의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5	0
5206.2	-단사(코움한 섬유의 것에 한한다)		
5206.21	--714.29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5206.21.10	--20, 000 데시텍스 이상의 것	5	0
5206.21.90	---기타	5	0
5206.22.00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5	0
5206.23.00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5	0
5206.24.00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5	0
5206.25.00	--125 데시텍스 미만의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5	0
5206.3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코움하지 아니한 섬유의 것에 한한다)		
5206.3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5206.31.10	---단사당 20, 000 데시텍스 이상의 것	5	0
5206.31.90	---기타	5	0
5206.32.00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5	0
5206.33.00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5	0
5206.34.00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5	0
5206.35.00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5	0
5206.4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코움한 섬유의 것에 한한다)		
5206.4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5206.41.10	---단사당 20, 000 데시텍스 이상의 것	5	0
5206.41.90	---기타	5	0
5206.42.00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5	0
5206.43.00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5	0
5206.44.00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5	0
5206.45.00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5	0
5207	면사(재봉사를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5207.10.00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5	0
5207.90.00	-기타	5	0
5208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5208.1	-표백하지 아니한 것		
5208.11.00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0
5208.12.00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에 한한다)	5	0
5208.13.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5	0
5208.19.00	--기타 직물	5	0
5208.2	-표백한 것		
5208.21.00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0
5208.22.00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	0
5208.23.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5	0
5208.29.00	--기타 직물	5	0
5208.3	-염색한 것		
5208.31.00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5210.1	-표백하지 아니한 것		
5210.11.00	--평직물	5	0
5210.19.00	--기타 직물	5	0
5210.2	-표백한 것		
5210.21.00	--평직물	5	0
5210.29.00	--기타 직물	5	0
5210.3	-염색한 것		
5210.31.00	--평직물	5	0
5210.32.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5	0
5210.39.00	--기타 직물	5	0
5210.4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210.41.00	--평직물	5	0
5210.49.00	--기타 직물	5	0
5210.5	-날염한 것		
5210.51.00	--평직물	5	0
5210.59.00	--기타 직물	5	0
5211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미만이고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211.1	-표백하지 아니한 것		
5211.11.00	--평직물	5	0
5211.12.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5	0
5211.19.00	--기타 직물	5	0
5211.20.00	-표백한 것	5	0
5211.3	-염색한 것		
5211.31.00	--평직물	5	0
5211.32.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5	0
5211.39.00	--기타 직물	5	0
5211.4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211.41.00	--평직물	5	0
5211.42.00	--데님	5	0
5211.43.00	--3 올 또는 4 올의 기타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5	0
5211.49.00	--기타 직물	5	0
5211.5	-날염한 것		
5211.51.00	--평직물	5	0
5211.52.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5	0
5211.59.00	--기타 직물	5	0
5212	기타 면직물		
5212.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		
5212.11.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5	0
5212.12.00	--표백한 것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5208.32.00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	0
5208.33.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5	0
5208.39.00	--기타 직물	5	0
5208.4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208.41.00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0
5208.42.00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	0
5208.43.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5	0
5208.49.00	--기타 직물	5	0
5208.5	-날염한 것		
5208.51.00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0
5208.52.00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	0
5208.59.00	--기타 직물	5	0
5209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209.1	-표백하지 아니한 것		
5209.11.00	--평직물	5	0
5209.12.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5	0
5209.19.00	--기타 직물	5	0
5209.2	-표백한 것		
5209.21.00	--평직물	5	0
5209.22.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5	0
5209.29.00	--기타 직물	5	0
5209.3	-염색한 것		
5209.31.00	--평직물	5	0
5209.32.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5	0
5209.39.00	--기타 직물	5	0
5209.4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209.41.00	--평직물	5	0
5209.42.00	--데님	5	0
5209.43.00	--3 올 또는 4 올의 기타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5	0
5209.49.00	--기타 직물	5	0
5209.5	-날염한 것		
5209.51.00	--평직물	5	0
5209.52.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5	0
5209.59.00	--기타 직물	5	0
5210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미만이고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5212.13.00	--염색한 것	5	0
5212.14.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	0
5212.15.00	--날염한 것	5	0
5212.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을 초과하는 것		
5212.21.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5	0
5212.22.00	--표백한 것	5	0
5212.23.00	--염색한 것	5	0
5212.24.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	0
5212.25.00	--날염한 것	5	0
53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지사 및 지사의 직물		
5301	아마(생 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아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5301.10.00	-생아마 또는 침지아마	0	0
5301.2	-쇄경(碎莖)·타마·핵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아마(방적한 것을 제외한다)		
5301.21.00	--쇄경 또는 타마한 것	0	0
5301.29.00	--기타	0	0
5301.30.00	-아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	0	0
5302	대마(생 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대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5302.10.00	-생대마 또는 침지대마	0	0
5302.90.00	-기타	0	0
5303	황마와 기타의 방직용 인피섬유(아마·대마 및 라미를 제외하며, 생 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들 섬유의 토우와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5303.10.00	-황마와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생 것 또는 침지한 것에 한한다)	0	0
5303.90.00	-기타	0	0
5305.00.00	코코넛, 아바카(마닐라마), 라미와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생 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들 섬유의 토우·노일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0	0
5306	아마사		
5306.10.00	-단사	0	0
5306.20.00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5	0
5307	제 5303 호의 황마 또는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사		
5307.10.00	-단사	5	0
5307.20.00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5	0
5308	기타 식물성 섬유사, 지사		
5308.10.00	-코이어사	0	0
5308.20.00	-대마사	0	0
5308.90.00	-기타	0	0
5309	아마직물		
5309.1	-아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의 것		
5309.11.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0	0
5309.19.00	--기타	0	0
5309.2	-아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미만의 것		
5309.21.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0	0
5309.29.00	--기타	0	0
5310	제 5303 호의 황마 또는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의 직물		
5310.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0	0
5310.90.00	-기타	0	0
5311.00.00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 지사의 직물	0	0
54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		
5401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401.10.00	-합성필라멘트의 것	5	0
5401.20.00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	5	0
540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의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2.1	-강력사(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에 한한다)		
5402.11.00	--아라미드의 것	0	0
5402.19.00	--기타	0	0
5402.20.0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에 한한다)	0	0
5402.3	-텍스처드사		
5402.31.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 텍스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0
5402.32.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 텍스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	0
5402.33.00	--폴리에스테르의 것	5	0
5402.34.00	--폴리프로필렌의 것	5	0
5402.39.00	--기타	5	0
5402.4	-기타의 사(단사로서 꼬임이 없거나 꼬임이 미터당 50 회 이하의 것에 한한다)		
5402.44.00	--탄성사	5	0
5402.45.00	--기타(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에 한한다)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5405.00.00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67 데시텍스 이상의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재생 또는 반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과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시폭이 5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0
5406.00.00	인조 필라멘트사(재봉사를 제외한다)로서 소매용의 것	5	0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 5404 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7.10.00	-강력사(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또는 폴리에스테르의 것에 한한다)의 직물	5	0
5407.20.00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5	0
5407.30.00	-제 11 부의 주 제 9 호의 직물	5	0
5407.4	-기타 직물(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5407.41.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5	0
5407.42.00	--염색한 것	5	0
5407.43.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	0
5407.44.00	--날염한 것	5	0
5407.5	-기타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5407.51.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5	0
5407.52.00	--염색한 것	5	0
5407.53.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	0
5407.54.00	--날염한 것	5	0
5407.6	-기타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5407.61.00	--비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5	0
5407.69.00	--기타	5	0
5407.7	-기타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5407.71.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5	0
5407.72.00	--염색한 것	5	0
5407.73.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	0
5407.74.00	--날염한 것	5	0
5407.8	-기타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에 한한다)		
5407.81.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5	0
5407.82.00	--염색한 것	5	0
5407.83.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	0
5407.84.00	--날염한 것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5402.46.00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방향성이 있는 것에 한한다)	5	0
5402.47.00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에 한한다)	5	0
5402.48.00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에 한한다)	5	0
5402.49.00	--기타	5	0
5402.5	-기타의 사(단사로서 미터당 꼬임이 50 회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402.51.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5	0
5402.52.00	--폴리에스테르의 것	5	0
5402.59.00	--기타	5	0
5402.6	-기타의 사[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5402.61.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5	0
5402.62.00	--폴리에스테르의 것	5	0
5402.69.00	--기타	5	0
5403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의 재생 또는 반합성의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3.10.00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의 것에 한한다)	0	0
5403.3	-기타의 사(단사)		
5403.31.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꼬임이 없거나 꼬임이 미터당 120 회 이하의 것에 한한다)	5	0
5403.32.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꼬임이 미터당 120 회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	0
5403.33.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5	0
5403.39.00	--기타	5	0
5403.4	-기타의 사[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5403.41.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5	0
5403.42.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5	0
5403.49.00	--기타	5	0
5404	합성모노필라멘트(67 데시텍스 이상의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시폭이 5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5404.1	-모노필라멘트		
5404.11.00	--탄성사	5	0
5404.12.00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에 한한다)	5	0
5404.19.00	--기타	5	0
5404.90.00	-기타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5407.9	-기타 직물		
5407.91.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5	0
5407.92.00	--염색한 것	5	0
5407.93.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	0
5407.94.00	--날염한 것	5	0
5408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제 5405.00.00 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8.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5	0
5408.2	-기타 직물(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 또는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5408.21.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5	0
5408.22.00	--염색한 것	5	0
5408.23.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	0
5408.24.00	--날염한 것	5	0
5408.3	-기타 직물		
5408.31.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5	0
5408.32.00	--염색한 것	5	0
5408.33.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	0
5408.34.00	--날염한 것	5	0
55	인조스테이플섬유		
5501	합성필라멘트토우		
5501.1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5501.10.10	---다음의 물품: (가) 플라스틱으로 도포 또는 피복한 것, (나) 엮거나 땋은 천연섬유 또는 합성섬유의 시드를 씌운 것	5	0
5501.10.90	---기타	0	0
5501.20	-폴리에스테르의 것		
5501.20.10	---다음의 물품: (가) 플라스틱으로 도포 또는 피복한 것, (나) 엮거나 땋은 천연섬유 또는 합성섬유의 시드를 씌운 것	5	0
5501.20.90	---기타	0	0
5501.30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것		
5501.30.10	---다음의 물품: (가) 플라스틱으로 도포 또는 피복한 것, (나) 엮거나 땋은 천연섬유 또는 합성섬유의 시드를 씌운 것	5	0
5501.30.90	---기타	0	0
5501.40	-폴리프로필렌의 것		
5501.40.10	---다음의 물품: (가) 플라스틱으로 도포 또는 피복한 것, (나) 엮거나 땋은 천연섬유 또는 합성섬유의 시드를 씌운 것	5	0
5501.40.90	---기타	0	0
5501.90	-기타		
5501.90.10	---다음의 물품: (가) 플라스틱으로 도포 또는 피복한 것, (나) 엮거나 땋은 천연섬유 또는 합성섬유의 시드를 씌운 것	5	0
5501.90.90	---기타	0	0
5502.00.00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 토우	0	0
5503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공정을 거친 것은 제외한다)		
5503.1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5503.11.00	--아라미드의 것	0	0
5503.19.00	--기타	0	0
5503.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	0
5503.30.00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것	0	0
5503.4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0	0
5503.90.00	-기타	0	0
5504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공정을 거친 것은 제외한다)		
5504.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0	0
5504.90.00	-기타	0	0
5505	인조섬유의 웨이스트(노일·사웨이스트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5505.10.00	-합성섬유의 것	0	0
5505.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의 것	0	0
5506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공정을 거친 것에 한한다)		
5506.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0	0
5506.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	0
5506.30.00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것	0	0
5506.90.00	-기타	0	0
5507.00.00	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공정을 거친 재생 또는 반합성의 스테이플 섬유	0	0
5508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508.10.0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	5	0
5508.20.00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5	0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5509.1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5509.11.00	--단사	5	0
5509.12.00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5	0
5509.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5509.21.00	--단사	5	0
5509.22.00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5509.3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5509.31.00	--단사	5	0
5509.32.00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5	0
5509.4	-기타의 사(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5509.41.00	--단사	5	0
5509.42.00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5	0
5509.5	-기타의 사(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에 한한다)		
5509.51.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5	0
5509.52.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5	0
5509.53.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5	0
5509.59.00	--기타	5	0
5509.6	-기타의 사(아크릴 또는 모다크릴 스테이플섬유의 것에 한한다)		
5509.61.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5	0
5509.62.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5	0
5509.69.00	--기타	5	0
5509.9	-기타의 사		
5509.91.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5	0
5509.92.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5	0
5509.99.00	--기타	5	0
551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5510.1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5510.11.00	--단사	5	0
5510.12.00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5	0
5510.20.00	-기타의 사(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5	0
5510.30.00	-기타의 사(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에 한한다)	5	0
5510.90.00	-기타의 사	5	0
5511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5511.10.0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5	0
5511.20.00	-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85 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	5	0
5511.30.0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5512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5512.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5512.11.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5	0
5512.19.00	--기타	5	0
5512.2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5512.21.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5	0
5512.29.00	--기타	5	0
5512.9	-기타		
5512.91.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5	0
5512.99.00	--기타	5	0
5513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85 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7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5513.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5513.11.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5	0
5513.12.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 올 또는 4 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5	0
5513.13.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5	0
5513.19.00	--기타 직물	5	0
5513.2	-염색한 것		
5513.21.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5	0
5513.23.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5	0
5513.29.00	--기타 직물	5	0
5513.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513.31.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5	0
5513.39.00	--기타 직물	5	0
5513.4	-날염한 것		
5513.41.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5	0
5513.49.00	--기타 직물	5	0
5514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85 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70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514.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5514.11.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5	0
5514.12.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 올 또는 4 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5514.19.00	--기타 직물	5	0
5514.2	-염색한 것		
5514.21.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5	0
5514.22.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 올 또는 4 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5	0
5514.23.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5	0
5514.29.00	--기타 직물	5	0
5514.3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	0
5514.4	-날염한 것		
5514.41.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5	0
5514.42.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 올 또는 4 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5	0
5514.43.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5	0
5514.49.00	--기타 직물	5	0
5515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5515.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5515.11.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5	0
5515.12.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5	0
5515.13.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5	0
5515.19.00	--기타	5	0
5515.2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 스테이플섬유의 것		
5515.21.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5	0
5515.22.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5	0
5515.29.00	--기타	5	0
5515.9	-기타 직물		
5515.91.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5	0
5515.99.00	--기타	5	0
5516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5516.1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5516.11.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5	0
5516.12.00	--염색한 것	5	0
5516.13.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	0
5516.14.00	--날염한 것	5	0
5516.2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85 퍼센트 미만인 것		
5516.21.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5	0
5516.22.00	--염색한 것	5	0
5516.23.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	0
5516.24.00	--날염한 것	5	0
5516.3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85 퍼센트 미만인 것		
5516.31.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5	0
5516.32.00	--염색한 것	5	0
5516.33.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	0
5516.34.00	--날염한 것	5	0
5516.4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85 퍼센트 미만인 것		
5516.41.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5	0
5516.42.00	--염색한 것	5	0
5516.43.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	0
5516.44.00	--날염한 것	5	0
5516.9	-기타		
5516.91.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5	0
5516.92.00	--염색한 것	5	0
5516.93.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	0
5516.94.00	--날염한 것	5	0
56	워딩 · 펠트 및 부직포, 특수사, 끈 · 코디지 · 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5601	방직용 섬유의 워딩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 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방직용 섬유의 더스트와 밀네프		
5601.2	-방직용 섬유재료의 워딩과 그 제품		
5601.21.00	--면제의 것	0	0
5601.22.00	--인조섬유제의 것	0	0
5601.29.00	--기타	0	0
5601.30.00	-섬유의 플록과 더스트 및 밀네프	0	0
5602	펠트(침투 · 도포 · 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602.10.00	-니들룸 펠트와 스티치 본드 섬유직물	5	0
5602.2	-기타의 펠트(침투 · 도포 · 피복 또는 적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602.21.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5	0
5602.2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5	0
5602.90.00	-기타	5	0
5603	부직포(침투 · 도포 · 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603.1	-인조필라멘트의 것		
5603.11.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5603.12.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초과 70 그램 이하인 것	5	0
5603.13.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 초과 150 그램 이하인 것	5	0
5603.14.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5	0
5603.9	-기타		
5603.91.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5	0
5603.92.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초과 70 그램 이하인 것	5	0
5603.93.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 초과 150 그램 이하인 것	5	0
5603.94.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5	0
5604	고무사 및 고무코드(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방직용 섬유사와 제 5404 호 또는 제 5405.00.00 호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한 것에 한한다)		
5604.10.00	-고무사와 고무코드(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5	0
5604.90.00	-기타	5	0
5605.00.00	금속드리사(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방직용 섬유사 또는 제 5404 호 또는 제 5405.00.00 호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스트립 또는 분상의 금속과 결합한 것 또는 금속으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0	0
5606	짐프사와 제 5404 호 또는 제 5405.00.00 호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 것에 한하며, 제 56.05.00.00 호의 것 및 짐프한 마모사는 제외한다), 셔닐사(플록상의 셔닐사는 포함한다), 루프웨일사		
5606.00.10	---셔닐사와 짐프사	0	0
5606.00.90	---기타	5	0
5607	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엮은 것인지 또는 짠 것인지 여부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607.2	-사이잘마 또는 아게부류의 기타 방직용 섬유의 것		
5607.21.00	--포장용 끈	5	0
5607.29.00	--기타	5	0
5607.4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의 것		
5607.41.00	--포장용 끈	5	0
5607.49.00	--기타	5	0
5607.50.00	-기타 합성섬유의 것	5	0
5607.90	-기타		
5607.90.10	---제 5303 호의 황마 또는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의 것	5	0
5607.90.90	---기타	5	0
5608	결절한 망지(끈·코디지 또는 로프로 만든 것에 한한다), 제품으로 된 어망 및 기타 제품으로 된 망(방직용 섬유제료제의 것에 한한다)		
5608.1	-인조섬유제의 것		
5608.11.00	--제품으로 된 어망	0	0
5608.19	--기타		
5608.19.10	---망과 망지(끈·코디지 또는 로프로 만든 것에 한한다)	0	0
5608.19.90	---기타	5	0
5608.90	-기타		
5608.90.10	---다음의 물품: (가) 실로 만든 어망, (나) 망과 망지(끈·코디지 또는 로프로 만든 것에 한한다)	0	0
5608.90.90	---기타	5	0
5609.00.00	제 5404 호 또는 제 5405.00.00 호의 사,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끈, 코디지, 로프 또는 케이블의 물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0
57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5701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결절한 것에 한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701.1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0	0
5701.9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0	0
5702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직조한 것에 한하고, 터후트 또는 플록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켈렘(Kelem)", "슈맥(Schumacks)", "카라마니(Karamanie)" 및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를 포함한다]		
5702.10.00	-"켈렘(Kelem)", "슈맥(Schumacks)", "카라마니(Karamanie)" 및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	0	0
5702.20.00	-코코넛섬유(코이어)제의 바닥깔개	0	0
5702.3	-기타(파일직물의 것에 한하며,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5702.31.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5	8A
5702.32.00	--인조 섬유제의 것	5	0
5702.3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5702.39.10	---테리직물제의 물품	5	8A
5702.39.20	---다음의 물품, NSA: (가) 사이잘 마 또는 황마의 것, (나) 면이 100 퍼센트 또는 그것의 파일이 면 100 퍼센트인 것	0	0
5702.39.90	---기타	5	8A
5702.4	-기타(파일직물의 것으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한한다)		
5702.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5702.41.10	---수제의 것	0	0
5702.41.90	---기타	5	8A
5702.42	--인조섬유제의 것		
5702.42.10	---수제의 것	0	0
5702.42.90	---기타	5	0
5702.4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5702.49.10	---테리직물제의 물품	5	8A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5705.00.20	---다음의 물품, NSA: (가) 코이어·사이잘 마 또는 황마의 것, (나) 면이 100 퍼센트 또는 그것의 파일이 면 100 퍼센트인 것, (다) 수제의 것	0	0
5705.00.30	---펠트제의 물품	5	0
5705.00.90	---기타	5	8A
58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 자수포		
5801	파일직물 및 셔닐직물(제 5802 호 또는 제 5806 호의 직물은 제외한다)		
5801.1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5801.10.10	---벨벳	5	0
5801.10.9	---기타		
5801.10.91	----절단된 코르덴	0	0
5801.10.99	----기타	5	0
5801.2	-면제의 것		
5801.21.00	--절단하지 아니한 위(緯)파일 직물	5	0
5801.22.00	--절단한 코르덴	0	0
5801.23.00	--기타 위(緯)파일 직물	5	0
5801.26.00	--셔닐직물	5	0
5801.27	--경파일 직물		
5801.27.10	---벨벳	5	0
5801.27.90	---기타	5	0
5801.3	-인조섬유제의 것		
5801.31.00	--절단하지 아니한 위(緯)파일 직물	5	0
5801.32.00	--절단한 코르덴	0	0
5801.33.00	--기타 위(緯)파일 직물	5	0
5801.36.00	--셔닐직물	5	0
5801.37	--경파일 직물		
5801.37.10	---벨벳	5	0
5801.37.90	---기타	5	0
5801.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5801.90.10	---벨벳	5	0
5801.90.90	---기타	5	0
5802	테리타올지 및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제 5806 호의 세폭직물은 제외한다), 터후트직물(제 5703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5802.1	-면제의 테리타올지 및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		
5802.11.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10	5
5802.19.00	--기타	10	5
5802.2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테리타올지 및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5702.49.20	---다음의 물품, NSA: (가) 사이잘 마 또는 황마의 것, (나) 면이 100 퍼센트 또는 그것의 파일이 면 100 퍼센트인 것, (다) 수제의 것	0	0
5702.49.90	---기타	5	8A
5702.50	-기타(파일직물의 것을 제외하며 제품으로 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702.50.10	---다음의 물품: (가) 사이잘 마 또는 황마의 것, (나) 면이 100 퍼센트인 것	0	0
5702.50.90	---기타	5	8A
5702.9	-기타(파일직물의 것을 제외하며, 제품으로 된 것에 한한다)		
5702.9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5702.91.10	---수제의 것	0	0
5702.91.90	---기타	5	8A
5702.92	--인조섬유제의 것		
5702.92.10	---수제의 것	0	0
5702.92.90	---기타	5	8A
5702.9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5702.99.10	---다음의 물품: (가) 사이잘 마 또는 황마의 것, (나) 면이 100 퍼센트인 것, (다) 수제의 것	0	0
5702.99.90	---기타	5	8A
5703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터후트한 것에 한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703.1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5	8A
5703.2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5	8A
5703.30.00	-기타 인조 섬유제의 것	5	8A
5703.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5703.90.10	---다음의 물품: (가) 코이어·사이잘 마 또는 황마의 것, (나) 면이 100 퍼센트 또는 그것의 파일이 면 100 퍼센트인 것	0	0
5703.90.90	---기타	5	8A
5704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펠트제의 것에 한하며, 터후트 또는 플록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704.10	-타일(표면적이 최대 0.3 제곱미터인 것에 한한다)		
5704.10.10	---니들룸공정에 의해 제조된 것	5	8A
5704.10.90	---기타	5	0
5704.90	-기타		
5704.90.10	---니들룸공정에 의해 제조된 것	5	8A
5704.90.90	---기타	5	0
5705	기타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705.00.10	---테리직물제의 물품	5	8A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5808.10.00	-브레이드(원단상의 것에 한한다)	5	0
5808.90.00	-기타	5	0
5809.00.00	금속사의 직물과 제 5605.00.00 호의 금속드리사의 직물(의류 · 실내용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에 한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5810	자수포(원단상 ·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된 것에 한한다)		
5810.10.00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	5	0
5810.9	-기타 자수포		
5810.91.00	--면제의 것	5	0
5810.92.00	--인조섬유제의 것	5	0
5810.9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5	0
5811.00.00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제 5810 호의 자수천은 제외한다)	5	0
59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5901	서적 장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 또는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트레이싱포, 회화용 캔버스, 해트파운데이션에 사용되는 버크럼 및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5901.10.00	-서적장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 또는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0	0
5901.90.00	-기타	0	0
5902	강력사의 타이어코드직물(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 폴리에스테르 또는 비스코스레이온의 것에 한한다)		
5902.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5	0
5902.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5	0
5902.90.00	-기타	5	0
5903	플라스틱으로 침투 · 도포 ·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 5902 호의 것은 제외한다)		
5903.10	-폴리(염화비닐)의 것		
5903.10.10	---1 제곱미터당 34 그램 이하의 플라스틱이 첨가된 물품으로서 다음의 것: (가) 인조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20 퍼센트 이상인 면을 기제로 한 직물, (나) 인조섬유를 기제로 한 직물(폴리올레핀은 제외한다)	5	0
5903.10.90	---기타	5	0
5903.20	-폴리우레탄의 것		
5903.20.10	---다음을 기제로 한 직물: (가) 인조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20 퍼센트 이상인 면의 것, (나) 인조섬유의 것(폴리올레핀은 제외한다)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5802.30.00	-터후트 직물	5	0
5803	거즈(제 5806 호의 세폭직물은 제외한다)		
5803.00.10	---면제의 것	0	0
5803.00.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5803.00.91	----인조섬유제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20 퍼센트 이상인 것	5	0
5803.00.99	----기타	0	0
5804	튜울 및 기타 망직물(제직한 것 · 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한 것은 제외한다), 레이스(원단상 ·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된 것에 한하며, 제 6002 호부터 제 6006 호까지의 직물은 제외한다)		
5804.10.00	-튜울 및 기타 망직물	0	0
5804.2	-기계제의 레이스		
5804.21.00	--인조섬유제의 것	0	0
5804.2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0	0
5804.30.00	-수제의 레이스	0	0
5805.00.00	고우벌린직 · 플란더스직 · 오버선직 · 뷰바이스직 및 이와 유사한 수직의 태피스트리 및 자수의 태피스트리(예: 퍼티포인트 · 십자수)(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5806	세폭직물(제 5807 호의 것은 제외한다),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으로 이루어진 세폭직물(볼덕)		
5806.10.00	-파일직물(테리타올지와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을 포함한다)과 셔닐직물	5	0
5806.20.00	-기타 직물(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5	0
5806.3	-기타 직물		
5806.31.00	--면제의 것	5	0
5806.32.00	--인조섬유제의 것	5	0
5806.3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5806.39.10	---대마 100 퍼센트인 것, 황마 100 퍼센트인 것 또는 대마와 황마 100 퍼센트인 것	0	0
5806.39.90	---기타	5	0
5806.40.00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으로 이루어진 세폭직물(볼덕)	0	0
5807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레이블, 배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상, 스트립 또는 특정의 형상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에 한하며,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		
5807.10.00	-직조한 것	5	0
5807.90.00	-기타	5	0
5808	원단상의 브레이드, 원단상의 장식용 트리밍(자수가 없는 것에 한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한다), 술 · 폼풍과 이와 유사한 물품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5911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이 류의 주 제 7 호에 열거된 것으로 공업용의 것에 한한다)		
5911.10.00	-침포로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 및 펠트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가죽 또는 기타 물품으로 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및 기타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종류의 이와 유사한 직물[위빙스핀들(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직물을 포함한다]	5	0
5911.20.00	-볼팅클로스(제품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0
5911.3	-방직용 섬유직물 및 펠트[엔드리스 또는 연결구를 갖춘 것으로서, 제지용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되는 것(예: 펄프 또는 석면-시멘트용)]		
5911.31.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미만인 것	5	0
5911.32.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이상인 것	5	0
5911.40.00	-착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종류의 여과포(인모제의 것을 포함한다)	5	0
5911.90	-기타		
5911.90.10	---다음의 물품: (가) 제품, (나) 브레이드	5	0
5911.90.90	---기타	5	0
60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		
6001	파일 직물("롱파일" 직물과 테리 직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001.10.00	-"롱파일" 직물	5	0
6001.2	-루푸파일 직물		
6001.21.00	--면제의 것	10	5
6001.22.00	--인조섬유제의 것	5	0
6001.2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5	0
6001.9	-기타		
6001.91.00	--면제의 것	5	0
6001.92.00	--인조섬유제의 것	5	0
6001.9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5	0
6002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이며 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제 60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2.40.00	-탄성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 퍼센트 이상이며, 고무사는 함유하지 아니한 것	5	0
6002.90.00	-기타	5	0
6003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제 6001 호 또는 제 6002 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3.1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5	0
6003.20.00	-면제의 것	5	0
6003.30.00	-합성섬유제의 것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5903.20.90	---기타	5	0
5903.90	-기타		
5903.90.10	---다음을 기제로 한 직물: (가) 인조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20 퍼센트 이상인 면의 것, (나) 인조섬유의 것(폴리올레핀은 제외한다)	5	0
5903.90.90	---기타	5	0
5904	리놀륨, 방직용 섬유의 뒷면에 도포 또는 피복된 것으로 만든 바닥깔개(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904.10.00	-리놀륨	5	0
5904.90.00	-기타	5	0
5905	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복재		
5905.00.10	---뒷면에 영구적으로 종이를 부착한 것	5	0
5905.00.20	---다음의 물품: (가) 인조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20 퍼센트 미만인 면의 것, (나)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5	0
5905.00.30	---다음의 물품: (가) 면의 것, NSA, (나) 인조섬유제의 것	5	0
5905.00.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0	0
5906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 5902 호의 것은 제외한다)		
5906.10.00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	5	0
5906.9	-기타		
5906.91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5906.91.10	---팽창 또는 다포고무로 적층한 섬유	0	0
5906.91.90	---기타	5	0
5906.99.00	--기타	5	0
5907.00.00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5	0
5908.00.00	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초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편조 또는 편직한 것에 한한다), 백열가스 맨틀 및 백열가스 맨틀용 관상편물(침투여부를 불문한다)	5	0
5909	방직용 섬유제의 호스 및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의 관상의 물품(기타 재료제의 내장·보강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5909.00.10	---내경이 1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0
5909.00.90	---기타	0	0
5910.00.00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 벨트 또는 벨팅(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에 한하며,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 또는 기타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6003.4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5	0
6003.90.00	-기타	5	0
6004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제 60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4.10.00	-탄성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 퍼센트 이상이며, 고무사는 함유하지 아니한 것	5	0
6004.90.00	-기타	5	0
6005	경편직 직물류(거룬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 6001 호부터 제 6004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6005.2	-면제의 것		
6005.21.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5	0
6005.22.00	--염색한 것	5	0
6005.23.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	0
6005.24.00	--날염한 것	5	0
6005.3	-합성섬유제의 것		
6005.31.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5	0
6005.32.00	--염색한 것	5	0
6005.33.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	0
6005.34.00	--날염한 것	5	0
6005.4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6005.41.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5	0
6005.42.00	--염색한 것	5	0
6005.43.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	0
6005.44.00	--날염한 것	5	0
6005.90.00	-기타	5	0
6006	기타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		
6006.1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5	0
6006.2	-면제의 것		
6006.21.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5	0
6006.22.00	--염색한 것	5	0
6006.23.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	0
6006.24.00	--날염한 것	5	0
6006.3	-합성섬유제의 것		
6006.31.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5	0
6006.32.00	--염색한 것	5	0
6006.33.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	0
6006.34.00	--날염한 것	5	0
6006.4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6006.41.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5	0
6006.42.00	--염색한 것	5	0
6006.43.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	0
6006.44.00	--날염한 것	5	0
6006.90.00	-기타	5	0
61	의류 및 의류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01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제 61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6101.20.00	-면제의 것	10	5
6101.30.00	-인조섬유제의 것	10	5
6101.9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102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제 61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6102.1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	5
6102.20.00	-면제의 것	10	5
6102.30.00	-인조섬유제의 것	10	5
6102.9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103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앙상블·재킷·블레이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6103.10.00	-슈트	10	5
6103.2	-앙상블		
6103.22.00	--면제의 것	10	5
6103.23.00	--합성섬유제의 것	10	5
6103.2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103.3	-재킷과 블레이저		
6103.31.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	5
6103.32.00	--면제의 것	10	5
6103.33.00	--합성섬유제의 것	10	5
6103.3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103.4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		
6103.41.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	5
6103.42.00	--면제의 것	10	5
6103.43.00	--합성섬유제의 것	10	5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6103.4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10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앙상블・재킷・블레이저・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6104.1	-슈트		
6104.13.00	--합성섬유제의 것	10	5
6104.1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104.2	-앙상블		
6104.22.00	--면제의 것	10	5
6104.23.00	--합성섬유제의 것	10	5
6104.2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104.3	-재킷과 블레이저		
6104.31.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	5
6104.32.00	--면제의 것	10	5
6104.33.00	--합성섬유제의 것	10	5
6104.3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104.4	-드레스		
6104.41.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	5
6104.42.00	--면제의 것	10	5
6104.43.00	--합성섬유제의 것	10	5
6104.44.00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10	5
6104.4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104.5	-스커트와 치마바지		
6104.51.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	5
6104.52.00	--면제의 것	10	5
6104.53.00	--합성섬유제의 것	10	5
6104.5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104.6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		
6104.61.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	5
6104.62.00	--면제의 것	10	5
6104.63.00	--합성섬유제의 것	10	5
6104.6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105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05.10.00	-면제의 것	10	5
6105.20.00	-인조섬유제의 것	10	5
6105.9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106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셔츠 및 셔츠브라우스(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06.10.00	-면제의 것	10	5
6106.20.00	-인조섬유제의 것	10	5
6106.9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107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팬츠・브리프・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 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07.1	-언더팬츠와 브리프		
6107.11.00	--면제의 것	10	5
6107.12.00	--인조섬유제의 것	10	5
6107.1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107.2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6107.21.00	--면제의 것	10	5
6107.22.00	--인조섬유제의 것	10	5
6107.2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107.9	-기타		
6107.91.00	--면제의 것	10	5
6107.9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108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슬립・페티코트・브리프・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목욕용 가운・드레싱 가운 및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08.1	-슬립과 페티코트		
6108.11.00	--인조섬유제의 것	10	5
6108.1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108.2	-브리프와 팬티		
6108.21.00	--면제의 것	10	5
6108.22.00	--인조섬유제의 것	10	5
6108.2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108.3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108.31.00	--면제의 것	10	5
6108.32.00	--인조섬유제의 것	10	5
6108.3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108.9	-기타		
6108.91.00	--면제의 것	10	5
6108.92.00	--인조섬유제의 것	10	5
6108.9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6109	티셔츠·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09.10.00	-면제의 것	10	5
6109.9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110	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10.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6110.11.00	--양모의 것	10	5
6110.12.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10	5
6110.19.00	--기타	10	5
6110.20.00	-면제의 것	10	5
6110.30.00	-인조섬유제의 것	10	5
6110.9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111	유아용의 의류와 의류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11.20	-면제의 것		
6111.20.10	---스타킹 및 언더스타킹	5	0
6111.20.20	---의류부속품, NSA,(양말, 발목양말 및 기타 양말류를 제외한다)	0	0
6111.20.90	---기타	10	5
6111.30	-합성섬유제의 것		
6111.30.10	---스타킹 및 언더스타킹	5	0
6111.30.20	---의류부속품, NSA,(양말, 발목양말 및 기타 양말류를 제외한다)	0	0
6111.30.90	---기타	10	5
6111.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6111.90.10	---스타킹과 언더스타킹	5	0
6111.90.20	---의류부속품,NSA,(양말, 발목양말 및 기타 양말류를 제외한다)	0	0
6111.90.90	---기타	10	5
6112	트랙슈트·스키슈트 및 수영복(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12.1	-트랙슈트		
6112.11.00	--면제의 것	10	5
6112.12.00	--합성섬유제의 것	10	5
6112.1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112.20.00	-스키슈트	10	5
6112.3	-남자용 또는 소년용의 수영복		
6112.31.00	--합성섬유제의 것	10	5
6112.3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112.4	-여자용 또는 소녀용의 수영복		
6112.41.00	--합성섬유제의 것	10	5
6112.4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113	의류(제 5903 호·제 5906 호 또는 제 5907.00 호의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로 만든 것에 한한다)		
6113.00.1	---제 5906 호에 분류되는 수입산 섬유제의 것		
6113.00.11	----잠수복·웨트슈트(wetsuits) 및 이와 유사한 의류	5	0
6113.00.12	----팽창 또는 다포고무로 적층한 직물로 만든 물품, NSA	0	0
6113.00.19	----기타	10	5
6113.00.20	---방사능 방지복·오염방지복 및 이와 유사한 보호용 의류	5	0
6113.00.90	---기타	10	5
6114	기타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14.20.00	-면제의 것	10	5
6114.30.00	-인조섬유제의 것	10	5
6114.9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115	팬티호스·타이즈·스타킹 및 기타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및 바닥을 대지 아니한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15.1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6115.10.10	---다음의 물품: (가) 팬티호스 및 타이즈, (나) 양말, 발목양말 및 기타 양말류	10	5
6115.10.90	---기타	5	0
6115.2	-기타 팬티호스와 타이즈		
6115.21	--합성섬유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에 한한다)		
6115.21.10	---44 데시텍스 미만의 것(탄성직물은 제외한다)	10	5
6115.21.90	---기타	10	5
6115.22.00	--합성섬유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에 한한다)	10	5
6115.2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115.30.00	-기타 여자용의 전길이 또는 무릎 길이의 양말류(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에 한한다)	5	0
6115.9	-기타		
6115.94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6115.94.10	---양말·발목양말 및 기타 양말류	10	5
6115.94.90	---기타	5	0
6115.95	--면제의 것		
6115.95.10	---양말·발목양말 및 기타 양말류	10	5
6115.95.90	---기타	5	0
6115.96	--합성섬유제의 것		
6115.96.10	---양말·발목양말 및 기타 양말류	10	5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6115.96.90	---기타	5	0
6115.9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6115.99.10	---양말·발목양말 및 기타 양말류	10	5
6115.99.90	---기타	5	0
6116	장갑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16.10.00	-플라스틱 또는 고무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	0	0
6116.9	-기타		
6116.91.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0	0
6116.92.00	--면제의 것	0	0
6116.93.00	--합성섬유제의 것	0	0
6116.9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0	0
6117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부속품,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것)		
6117.10.00	-숄·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0	0
6117.80	-기타 부속품		
6117.80.10	---넥타이류	5	0
6117.80.90	---기타	0	0
6117.90	-부분품		
6117.90.10	---다음의 부분품: (가) 탄성처리 또는 고무처리한 직물의 것, (나) 패딩 스키웨어의 것, (다) 파카의 것	10	5
6117.90.20	---다음의 물품의 것, NSA: (가) 스타킹과 언더스타킹, (나) 타이와 보타이	5	0
6117.90.30	---의류 부속품의 것, NSA,(양말·발목양말과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0	0
6117.90.40	---어깨 패드	0	0
6117.90.90	---기타	10	5
62	의류 및 의류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한다)		
6201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 62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6201.1	-오버코트·레인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201.11.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	5
6201.12.00	--면제의 것	10	5
6201.13.00	--인조섬유제의 것	10	5
6201.1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201.9	-기타		
6201.91.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	5
6201.92.00	--면제의 것	10	5
6201.93.00	--인조섬유제의 것	10	5
6201.9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202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 62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6202.1	-오버코트·레인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202.11.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	5
6202.12.00	--면제의 것	10	5
6202.13.00	--인조섬유제의 것	10	5
6202.1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202.9	-기타		
6202.91.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	5
6202.92.00	--면제의 것	10	5
6202.93.00	--인조섬유제의 것	10	5
6202.9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203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앙상블·재킷·블레이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은 제외한다)		
6203.1	-슈트		
6203.11.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	8A
6203.12.00	--합성섬유제의 것	10	8A
6203.1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8A
6203.2	-앙상블		
6203.22.00	--면제의 것	10	8A
6203.23.00	--합성섬유제의 것	10	8A
6203.2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8A
6203.3	-재킷과 블레이저		
6203.31.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	8A
6203.32.00	--면제의 것	10	8A
6203.33.00	--합성섬유제의 것	10	8A
6203.3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8A
6203.4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		
6203.41.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	8A
6203.42.00	--면제의 것	10	8A
6203.43.00	--합성섬유제의 것	10	8A
6203.4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8A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620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앙상블·재킷·블레이저·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은 제외한다)		
6204.1	-슈트		
6204.11.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	5
6204.12.00	--면제의 것	10	5
6204.13.00	--합성섬유제의 것	10	5
6204.1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204.2	-앙상블		
6204.21.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	5
6204.22.00	--면제의 것	10	5
6204.23.00	--합성섬유제의 것	10	5
6204.2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204.3	-재킷과 블레이저		
6204.31.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	5
6204.32.00	--면제의 것	10	5
6204.33.00	--합성섬유제의 것	10	5
6204.3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204.4	-드레스		
6204.41.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	5
6204.42.00	--면제의 것	10	5
6204.43.00	--합성섬유제의 것	10	5
6204.44.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의 것	10	5
6204.4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204.5	-스커트와 치마바지		
6204.51.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	5
6204.52.00	--면제의 것	10	5
6204.53.00	--합성섬유제의 것	10	5
6204.5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204.6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		
6204.61.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	5
6204.62.00	--면제의 것	10	5
6204.63.00	--합성섬유제의 것	10	5
6204.6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205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6205.20.00	-면제의 것	10	5
6205.30.00	-인조섬유제의 것	10	5
6205.9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206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셔츠 및 셔츠 브라우스		
6206.10.0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10	5
6206.2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	5
6206.30.00	-면제의 것	10	5
6206.40.00	-인조섬유제의 것	10	5
6206.9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207	남자 또는 소년용의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언더팬츠·브리프·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 가운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207.1	-언더팬츠와 브리프		
6207.11.00	--면제의 것	10	5
6207.1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207.2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6207.21.00	--면제의 것	10	5
6207.22.00	--인조섬유제의 것	10	5
6207.2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207.9	-기타		
6207.91.00	--면제의 것	10	5
6207.9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208	여자 또는 소녀용의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슬립·페티코트·브리프·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목욕용 가운·드레싱 가운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208.1	-슬립과 페티코트		
6208.11.00	--인조섬유제의 것	10	5
6208.1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208.2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208.21.00	--면제의 것	10	5
6208.22.00	--인조섬유제의 것	10	5
6208.2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208.9	-기타		
6208.91.00	--면제의 것	10	5
6208.92.00	--인조섬유제의 것	10	5
6208.9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209	유아용 의류 및 의류 부속품		
6209.20	-면제의 것		
6209.20.10	---침투 또는 도포되지 아니한 부직포로 만든 의류[(가) 패딩 스키웨어, (나) 파카는 제외한다]	5	0
6209.20.20	---의류 부속품	0	0
6209.20.90	---기타	10	5
6209.30	-합성섬유제의 것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6209.30.10	---침투 또는 도포되지 아니한 부직포로 만든 의류[(가) 패딩 스키웨어, (나) 파카는 제외한다]	5	0
6209.30.20	---의류 부속품	0	0
6209.30.90	---기타	10	5
6209.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6209.90.10	---침투 또는 도포되지 아니한 부직포로 만든 의류[(가) 패딩 스키웨어, (나) 파카는 제외한다]	5	0
6209.90.20	---의류 부속품	0	0
6209.90.90	---기타	10	5
6210	의류(제 5602 호·제 5603 호·제 5903 호·제 5906 호 또는 제 5907.00.00 호의 직물류의 제품에 한한다)		
6210.10	-제 5602 호 또는 제 5603 호의 직물제의 것		
6210.10.10	---침투 또는 도포하지 아니한 부직포의 것	5	0
6210.10.90	---기타	10	5
6210.20.00	-기타 의류(제 6201.11.00 호부터 제 6201.19.00 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에 한한다)	10	5
6210.30.00	-기타 의류(제 6202.11.00 호부터 제 6202.19.00 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에 한한다)	10	5
6210.40	-남자 또는 소년용의 기타 의류		
6210.40.10	---방사능 방지복·오염 방지복 및 이와 유사한 보호용 의류	5	0
6210.40.20	---잠수복·웨트슈트(wetsuits) 및 이와 유사한 의류	5	0
6210.40.90	---기타	10	5
6210.50	-여자 또는 소녀용의 기타 의류		
6210.50.10	---방사능 방지복·오염 방지복 및 이와 유사한 보호용 의류	5	0
6210.50.20	---잠수복·웨트슈트(wetsuits) 및 이와 유사한 의류	5	0
6210.50.90	---기타	10	5
6211	트랙슈트·스키슈트 및 수영복, 기타 의류		
6211.1	-수영복		
6211.11.00	--남자 또는 소년용의 것	10	5
6211.12.00	--여자 또는 소녀용의 것	10	5
6211.20.00	-스키슈트	10	5
6211.3	-남자 또는 소년용의 기타 의류		
6211.32	--면제의 것		
6211.32.10	---카라, 소매 및 셔츠 프런츠	0	0
6211.32.90	---기타	10	5
6211.33	--인조섬유제의 것		
6211.33.10	---카라, 소매 및 셔츠 프런츠	0	0
6211.33.90	---기타	10	5
6211.3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6211.39.10	---카라, 소매 및 셔츠 프런츠	0	0
6211.39.90	---기타	10	5
6211.4	-여자 또는 소녀용의 기타 의류		
6211.42.00	--면제의 것	10	5
6211.43.00	--인조섬유제의 것	10	5
6211.4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212	브래지어·거들·코르셋·브레이스·서스펜더·가터 및 이와 유사한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인지 또는 뜨개질 편물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212.10.00	-브래지어	10	5
6212.20.00	-거들과 팬티거들	10	5
6212.30.00	-콜세렛트	10	5
6212.90	-기타		
6212.90.10	---다음의 물품: (가) 코르셋·바디슈트 및 이와 유사한 것, (나) 브래지어 부분품[다음은 제외한다: (1) 조절 가능한 어깨 끈, 또는 (2) 브래지어 백 리플레이스먼트·고무밴드·방직용 섬유·훅과 아이(eyes)], (다) 코르셋·거들·팬티거들·콜세렛트(corselettes)·바디슈트 및 이와 유사한 것의 부분품	10	5
6212.90.90	---기타	5	0
6213	손수건		
6213.20.00	-면제의 것	5	0
6213.9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5	0
6214	쇼울·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214.10.0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0	0
6214.2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0	0
6214.30.00	-합성섬유제의 것	0	0
6214.4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0	0
6214.9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0	0
6215	넥타이류		
6215.10.0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5	0
6215.20.00	-인조섬유제의 것	5	0
6215.9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5	0
6216.00.00	장갑, 벙어리장갑	0	0
6217	기타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 6212 호의 것은 제외한다)		
6217.10	-부속품		
6217.10.10	---다음의 물품: (가) 여성용 의류에 사용되는 조절 가능한 어깨 끈, (나) 여성용 의류의 칼라 및 요크, (다) 신발류	5	0
6217.10.90	---기타	0	0
6217.90	-부분품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6217.90.10	---다음의 물품의 것: (가) 여성용 의류에 사용되는 조절 가능한 어깨 끈, (나) 여성용 의류의 칼라 및 요크, (다) 잠수복·웨트슈트(wetsuits)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라) 신발류, (마) 손수건, (바) 부직포 의류의 부직포, (사) 타이·보타이 및 크러뱃	5	0
6217.90.20	---의류 부속품, NSA, 및 제 6211.32.10 호, 제 6211.33.10 호 또는 제 6211.39.10 호의 물품의 것	0	0
6217.90.30	---어깨 패드	0	0
6217.90.90	---기타	10	5
63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된 기타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 및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6301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		
6301.10.00	-전기모포	5	0
6301.20.00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 및 여행용 러그(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에 한한다)	5	0
6301.30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 및 여행용 러그(면제의 것에 한한다)		
6301.30.1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339 그램 이상으로 면이 100 퍼센트인 물품	0	0
6301.30.90	---기타	5	0
6301.40.00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 및 여행용 러그(합성섬유제의 것에 한한다)	5	0
6301.90	-기타 모포 및 여행용 러그		
6301.90.1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339 그램 이상으로 비스코스섬유가 100 퍼센트인 물품	0	0
6301.90.90	---기타	5	0
6302	베드린넨·테이블린넨·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		
6302.10.00	-베드린넨(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10	5
6302.2	-기타 베드린넨(날염된 것에 한한다)		
6302.21.00	--면제의 것	10	5
6302.22.00	--인조섬유제의 것	10	5
6302.2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302.3	-기타 베드린넨		
6302.31.00	--면제의 것	10	5
6302.32.00	--인조섬유제의 것	10	5
6302.3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10	5
6302.40.00	-테이블린넨(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5	0
6302.5	-기타 테이블린넨		
6302.51	--면제의 것		
6302.51.10	---손으로 만든 자수천 또는 손으로 만든 아플리케	0	0
6302.51.90	---기타	5	0
6302.53.00	--인조섬유제의 것	5	0
6302.5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5	0
6302.60.00	-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테리타월지 또는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의 것으로서, 면제의 것에 한한다)	10	5
6302.9	-기타		
6302.91	--면제의 것		
6302.91.10	---티타월	0	0
6302.91.20	---다음의 물품, NSA: (가) 세안용, (나) 타월	10	5
6302.91.90	---기타	5	0
6302.93.00	--인조섬유제의 것	5	0
6302.9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6302.99.10	---티타월(아마제의 것)	0	0
6302.99.90	---기타	5	0
6303	커튼(드레이프를 포함한다)·실내용 블라인드, 커튼 또는 침대용 밸런스		
6303.1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6303.12	--합성섬유제의 것		
6303.12.10	---커튼	10	5
6303.12.90	---기타	5	0
6303.1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6303.19.10	---커튼	10	5
6303.19.90	---기타	5	0
6303.9	-기타		
6303.91	--면제의 것		
6303.91.10	---다음의 물품: (가) 침대용 밸런스(주름 장식), (나) 커튼	10	5
6303.91.90	---기타	5	0
6303.92	--합성섬유제의 것		
6303.92.10	---다음의 물품: (가) 침대용 밸런스(주름 장식), (나) 커튼	10	5
6303.92.90	---기타	5	0
6303.9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6303.99.10	---다음의 물품: (가) 침대용 밸런스(주름 장식), (나) 커튼	10	5
6303.99.90	---기타	5	0
6304	기타 실내용품(제 9404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304.1	-침대덮개		
6304.11.00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5	0
6304.19	--기타		
6304.19.10	---다음의 침대덮개: (가) 알함브라(alhambra), (나) 디미티(dimity), (다) 그리션(grecian), (라) 허니콤(honeycomb), (마) 마르셀라(marcella)	5	0
6304.19.90	---기타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6304.9	-기타		
6304.91.00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5	0
6304.92.00	--면제의 것(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한다)	5	0
6304.93.00	--합성섬유제의 것(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한다)	5	0
6304.9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한다)	5	0
6305	포장용의 포대		
6305.10.00	-제 5303 호의 황마 또는 기타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의 것	0	0
6305.20.00	-면제의 것	0	0
6305.3	-인조의 방직용 섬유제의 것		
6305.32.00	--중간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에 한한다)	5	0
6305.33	--기타(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것에 한한다)		
6305.33.10	---양모 팩	0	0
6305.33.90	---기타	5	0
6305.39	--기타		
6305.39.10	---양모 팩	0	0
6305.39.90	---기타	5	0
6305.90.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0	0
6306	타포린·천막 및 차양, 텐트, 보트·세일보드 또는 랜드크래프트용 돛, 캠프용품		
6306.1	-타포린·천막 및 차양		
6306.12.00	--합성섬유제의 것	5	0
6306.1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5	0
6306.2	-텐트		
6306.22.00	--합성섬유제의 것	5	0
6306.29.0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5	0
6306.30.00	-돛	5	0
6306.40.00	-압축공기식 매트리스	5	0
6306.90.00	-기타	5	0
6307	기타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		
6307.10	-마루닦이포·접시닦이포·더스터 및 이와 유사한 청소용포		
6307.10.10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것	5	0
6307.10.20	---펠트 제품	5	0
6307.10.30	---부직포	5	0
6307.10.90	---기타	5	0
6307.20.00	-구명재킷 및 구명벨트	5	0
6307.90	-기타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6307.90.10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제품으로 다음의 것: (가) 고무사와 결합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것, (나)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충하였거나 고무를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사로 만든 것	5	0
6307.90.2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제품, NSA		
6307.90.21	----원단 상태의 장식용 트리밍	5	0
6307.90.29	----기타	5	0
6307.90.30	---펠트 제품	5	0
6307.90.40	---부직포	5	0
6307.90.9	---기타		
6307.90.91	----깃발	5	0
6307.90.99	----기타	5	0
6308.00.00	러그, 태피스트리, 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 또는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물 및 사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에 한한다)	0	0
6309.00.00	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용하던 제품	0	0
6310	넝마(사용하던 것 또는 신품의 것에 한한다), 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의 스크랩과 끈·코디지·로프 또는 케이블제품의 폐품(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에 한한다)		
6310.10.00	-선별한 것	0	0
6310.90.00	-기타	0	0
64	신발류·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6401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갑피를 바닥에 스티칭·리베팅·네일링·스크루잉·플러깅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시켰거나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6401.10.00	-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신발류	5	5
6401.9	-기타 신발류		
6401.92	--발목을 덮는 것으로서 무릎을 덮지 아니하는 것		
6401.92.10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잠수복 또는 웨트슈트(wetsuits)와 함께 사용되는 종류의 신발류, 스키부츠·크로스 컨트리스키화 및 스노우보드부츠	0	0
6401.92.90	---기타	5	5
6401.99	--기타		
6401.99.10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잠수복 또는 웨트슈트(wetsuits)와 함께 사용되는 종류의 신발류로서 무릎을 덮지 아니하는 것, 무릎을 덮지 아니하는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 스키화 및 스노우보드부츠	0	0
6401.99.20	---무릎을 덮는 신발류	5	5
6401.99.90	---기타	5	5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6402	기타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6402.1	-스포츠용 신발류		
6402.12.00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우보드부츠	0	0
6402.19.00	--기타	5	5
6402.20.00	-신발류(갑피끈을 플럭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에 한한다)	5	5
6402.9	-기타 신발류		
6402.91	--발목을 덮는 것		
6402.91.10	---전용 또는 주로 잠수복 또는 웨트슈트(wetsuits)와 함께 사용되는 종류의 신발류(보호용의 금속 토캡이 있는 신발류는 제외한다)	0	0
6402.91.90	---기타	5	5
6402.99	--기타		
6402.99.10	---전용 또는 주로 잠수복 또는 웨트슈트(wetsuits)와 함께 사용되는 종류의 신발류(보호용의 금속 토캡이 있는 신발류는 제외한다)	0	0
6402.99.90	---기타	5	5
6403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가죽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6403.1	-스포츠용 신발류		
6403.12.00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 스키화 및 스노우보드부츠	0	0
6403.19.00	--기타	5	5
6403.20.0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제 끈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0	0
6403.40.00	-기타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것에 한한다)	5	5
6403.5	-기타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6403.51.00	--발목을 덮는 것	5	5
6403.59.00	--기타	5	5
6403.9	-기타 신발류		
6403.91.00	--발목을 덮는 것	5	5
6403.99.00	--기타	5	5
6404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에 한한다)		
6404.1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6404.11	--스포츠용 신발류, 정구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6404.11.10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 스키화 및 스노우보드부츠	0	0
6404.11.90	---기타	5	5
6404.19	--기타		
6404.19.10	---전용 또는 주로 잠수복 또는 웨트슈트(wetsuits)와 함께 사용되는 종류의 신발류	0	0
6404.19.90	---기타	5	5
6404.20.0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에 한한다)	5	5
6405	기타 신발류		
6405.10.00	-갑피가 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인 것	5	5
6405.20.00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것	5	5
6405.90	-기타		
6405.90.10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 스키화 및 스노우보드부츠	0	0
6405.90.90	---기타	5	5
6406	신발류 부분품[갑피(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힐쿠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레깅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6406.10	-갑피와 그 부분품(보강재를 제외한다)		
6406.10.10	---금속제의 부분품	5	0
6406.10.90	---기타	5	0
6406.20.00	-바깥바닥 및 뒷굽(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에 한한다)	5	0
6406.90	-기타		
6406.90.10	---각반·레깅 및 이와 유사한 제품 및 이들의 부분품	0	0
6406.90.90	---기타	5	0
65	모자류와 그 부분품		
6501.00.00	펠트제의 모체(성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펠트제의 플래토우 및 망융(슬릿망융을 포함한다)	5	0
6502.00.00	모체(각종 재료제의 스트립을 엮은 것 또는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의 것,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 안을 대지 아니한 것 그리고 장식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6504.00.00	모자(각종 재료제의 스트립을 엮은 것 또는 결합하여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6505	모자[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또는 원단상(스트립상의 것은 제외한다)의 레이스·펠트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각종 재료제의 헤어네트(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505.00.10	---부직포제의 것(헤어네트는 제외한다)	5	0
6505.00.90	---기타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6704.1	-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6704.11.00	--전체가발	0	0
6704.19.00	--기타	0	0
6704.20.00	-인모제의 것	0	0
6704.90.00	-기타 재료제의 것	0	0
68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801.00.00	천연석재의 포석·연석 및 판석(슬레이트의 것은 제외한다)	0	0
6802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슬레이트를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 6801.00.00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천연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석재(슬레이트를 포함한다)의 입·세편 및 분		
6802.10.00	-타일·큐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최대표면적이 일변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입·세편 및 분	0	0
6802.2	-기타 비석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와 이들의 제품(단순히 평판상 또는 수평상으로 절단하였거나 톱질한 것에 한한다)		
6802.21.00	--대리석·트래버틴 및 앨러바스터	5	0
6802.23.00	--화강암	5	0
6802.29.00	--기타 석	0	0
6802.9	-기타		
6802.91.00	--대리석·트래버틴 및 앨러바스터	5	0
6802.92.00	--기타 석회질 암석	0	0
6802.93.00	--화강암	5	0
6802.99.00	--기타석	5	0
6803.00.00	가공한 슬레이트 및 슬레이트 제품 또는 응결슬레이트의 제품	5	0
6804	밀스톤·그라인드스톤·그라인딩휠 및 이와 유사한 것(연마·벼리기·광택·정형 또는 절단용의 것으로 프레임을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수지석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응결한 천연 또는 인조 연마제 또는 도자제의 것에 한하며, 기타 재료제의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6804.10.00	-밀스톤과 그라인드스톤(밀링용·그라인딩용 또는 펄핑용의 것에 한한다)	0	0
6804.2	-기타 밀스톤·그라인드스톤·그라인딩휠 및 이와 유사한 것		
6804.21.00	--합성 또는 천연다이아몬드제의 것(응결된 것에 한한다)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6506	기타 모자(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506.10.00	-안전모자	0	0
6506.9	-기타		
6506.91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		
6506.91.10	---전용 또는 주로 잠수복 또는 웨트슈트(wetsuits)와 함께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0
6506.91.90	---기타	0	0
6506.99	--기타 재료제의 것		
6506.99.10	---부직포제의 것(시트지 또는 판지)	5	0
6506.99.90	---기타	0	0
6507.00.00	모자용의 밴드·내장재·커버·해트파운데이션·해트프레임·챙 및 턱끈	0	0
66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승마용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6601	산류(지팡이 겸용 우산·정원용 산류 및 이와 유사한 산류를 포함한다)		
6601.10.00	-정원용 또는 이와 유사한 산류	5	0
6601.9	-기타		
6601.91.00	--대가 절첩식인 것	0	0
6601.99.00	--기타	5	0
6602.00.00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 승마용 채찍 및 이와 유사한 물품	0	0
6603	제 6601 호 또는 제 6602.00.00 호의 물품의 부분품·트리밍 및 부속품		
6603.20.00	-산류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0	0
6603.90.00	-기타	0	0
67	조제우모와 새의 솜털 및 우모 또는 새의 솜털로 만들어진 제품, 조화, 인모제품		
6701.00.00	우모 또는 솜털이 붙은 새의 피와 기타 부분, 우모, 우모의 부분, 솜털 및 이들의 제품(제 0505 호의 물품과 가공한 우축 및 우경은 제외한다)	0	0
6702	인조의 꽃·잎 및 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의 꽃·잎 또는 과실로 만든 제품		
6702.10.00	-플라스틱제의 것	0	0
6702.90.00	-기타 재료제의 것	0	0
6703.00.00	인모(정돈·표백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에 한한다), 가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제조용으로 제조한 양모나 기타 수모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	0	0
6704	가발·가수염·눈썹 및 속눈썹·스위치 및 이와 유사한 것(인모제나 수모제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에 한한다), 인모제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6804.22.00	--기타 연마제의 것(응결된 것에 한한다) 또는 도자제의 것	5	0
6804.23.00	--천연석제의 것	0	0
6804.30.00	-수지석(手砥石)	5	0
6805	방직용 섬유재료·지·판지 또는 기타 재료를 기제로 한 분상 또는 입상의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특정의 형상으로 절단 또는 봉합한 것인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805.10.00	-방직용 섬유직물만을 기제로 한 것	5	0
6805.20.00	-지 또는 판지만을 기제로 한 것	5	0
6805.30.00	-기타 재료를 기제로 한 것	5	0
6806	슬랙울·록울 및 이와 유사한 광물성울, 박리한 버미큐라이트·팽창점토·다포슬랙 및 이와 유사하게 팽창한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 또는 흡음용의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 및 그 제품(제 6811 호 또는 제 6812 호 또는 제 69 류의 것은 제외한다)		
6806.10.00	-슬랙울, 록울 및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벌크상, 쉬트상 또는 롤상의 것에 한한다)	5	0
6806.20.00	-박리한 버미큐라이트·팽창점토·다포슬랙 및 이와 유사한 팽창 광물성재료(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0	0
6806.90	-기타		
6806.90.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품으로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6806.90.90	---기타	5	0
6807	아스팔트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예: 석유역청 또는 콜타르 피치)의 제품		
6807.10.00	-롤상의 것	5	0
6807.90.00	-기타	0	0
6808.00.00	패널·보드·타일·블록 및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짚 또는 목재의 대패밥·칩·파티클·톱밥 또는 기타 웨이스트를 시멘트·플라스터 또는 기타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에 한한다)	5	0
6809	플라스터제품 또는 플라스터를 기제로 조합한 제품		
6809.1	-보드·쉬트·패널·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장식한 것은 제외한다)		
6809.11.00	--지 또는 판지만으로 입혔거나 보강한 것	5	0
6809.19.00	--기타	5	0
6809.90.00	-기타 제품	5	0
6810	시멘트제품·콘크리트제품 또는 인조석제품(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810.1	-타일·판석·벽돌 및 이와 유사한 제품		
6810.11.00	--건축용 블록 및 벽돌	5	0
6810.19.00	--기타	5	0
6810.9	-기타 제품		
6810.91.00	--조립식 건축자재(건축 또는 토목 공사용의 것에 한한다)	5	0
6810.99.00	--기타	5	0
6811	석면시멘트제품·셀룰로오스파이버시멘트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6811.40.00	-석면을 함유한 것	5	0
6811.8	-석면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		
6811.81.00	--파형의 쉬트	5	0
6811.82.00	--기타 쉬트·패널·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5	0
6811.89.00	--기타 제품	5	0
6812	가공한 석면섬유, 석면을 기제로 한 혼합물 또는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제로 한 혼합물, 이들 혼합물의 제품 또는 석면제품(예: 사·직물·의류·모자·신발·개스킷)(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 6811 호 또는 제 6813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812.80	-청석면의 것		
6812.80.10	---다음의 물품: (가) 의류·의류부속품·신발류 및 모자류, (나) 압축 가공한 쉬트상 또는 롤상의 섬유 조인팅(jointing), (다) 코드 및 스트링(엮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라) 청석면 섬유를 가공한 것, 청석면 및 탄산마그네슘을 기제로 한 혼합물, (마) 지·표지용의 판지 및 펠트, (바) 직물 또는 메리야스 편물, (사) 실(yarn 및 thread)	0	0
6812.80.2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품으로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6812.80.90	---기타	0	0
6812.9	-기타		
6812.91.00	--의류, 의류부속품, 신발 및 모자류	0	0
6812.92.00	--지, 표지용의 판지 및 펠트	0	0
6812.93.00	--압축가공한 쉬트상 또는 롤상의 석면섬유 조인팅	0	0
6812.99	--기타		
6812.99.10	---다음의 물품: (가) 가공한 석면섬유, 석면을 기제로 한 혼합물 또는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제로 한 혼합물, (나) 실(yarn 및 thread), (다) 코드와 스트링(엮은 것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라) 직물 또는 메리야스 편물	0	0
6812.99.2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품으로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6812.99.90	---기타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6813	마찰재료와 그 제품(예: 쉬트·롤·스트립·세그먼트·디스크·와셔·패드)(장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브레이크용·클러치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기타 광물성 재료 또는 셀룰로오스를 기제로 한 것에 한하며, 직물 또는 기타 재료와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		
6813.20	-석면을 함유한 것		
6813.20.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품으로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6813.20.90	---기타	5	0
6813.8	-석면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		
6813.81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6813.81.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품으로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6813.81.90	---기타	5	0
6813.89	--기타		
6813.89.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품으로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6813.89.90	---기타	5	0
6814	운모(가공한 것에 한한다) 및 운모의 제품(응결 또는 재생운모를 포함하며 지·판지 또는 기타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814.10.00	-판·쉬트 및 스트립(응결 또는 재생한 운모의 것에 한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0
6814.90.00	-기타	5	0
6815	석제품 또는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 및 이탄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815.10.00	-비전기용 흑연 또는 기타 탄소제품	5	0
6815.20.00	-이탄제품	0	0
6815.9	-기타 제품		
6815.91.00	--마그네사이트·백운석 또는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5	0
6815.99.00	--기타	5	0
69	도자제품		
6901.00.00	벽돌·블록·타일 및 기타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분(예: 규조토·트리폴리트 또는 다이어토마이트) 또는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	5	0
6902	내화벽돌·내화블록·내화타일 및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2.10.00	-마그네슘·칼슘 또는 크로뮴원소를 산화마그네슘·산화칼슘 또는 산화크로뮴으로 표현하였을때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5	0
6902.20.00	-알루미나·실리카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5	0
6902.90.00	-기타	5	0
6903	기타 내화성의 도자제품(예: 레토트·도가니·머플·노즐·플러그·서포트·큐펠·관·쉬드 및 봉)(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3.10.00	-흑연 또는 기타 탄소 또는 이들의 혼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5	0
6903.20.00	-알루미나(Al_2O_3) 또는 알루미나와 실리카(SiO_2)의 혼합물 또는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5	0
6903.90.00	-기타	5	0
6904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바닥깔개용 블록·서포트타일 또는 필러타일 및 이와 유사한 것		
6904.10.00	-건축용 벽돌	0	0
6904.90.00	-기타	0	0
6905	기와·굴뚝통·굴뚝갓·굴뚝용 내장재·건축용 장식품 및 기타 도자제의 건설용품		
6905.10.00	-기와(지붕타일)	5	0
6905.90.00	-기타	5	0
6906.00.00	도자제의 관·도관·흄통 및 관의 연결구류	5	0
6907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노용 또는 벽용의 타일(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뒷면을 보강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6907.10.00	-타일·큐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의 여부를 불문하며, 최대표면적이 일변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인 것에 한한다)	0	0
6907.90.00	-기타	5	0
6908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노용 또는 벽용의 타일(유약을 시공한 것에 한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유약을 시공한 것에 한하며, 뒷면을 보강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6908.10.00	-타일·큐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의 여부를 불문하며, 최대표면적이 일변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인 것에 한한다)	0	0
6908.90.00	-기타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6909	실험실용, 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 농업용의 도자제의 통, 튜브 및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 및 이와 유사한 제품		
6909.1	-실험실용·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		
6909.11.00	--자기제의 것	5	0
6909.12.00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5	0
6909.19.00	--기타	5	0
6909.90.00	-기타	5	0
6910	도자제의 설거지통·세면대·세면대용 받침·목욕통·비데·수세식변기통·수세식변기용 물통·소변기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		
6910.10.00	-자기제의 것	5	0
6910.90.00	-기타	5	0
6911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		
6911.10.00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5	0
6911.90.00	-기타	5	0
6912.00.00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	5	0
6913	도자제의 소상 및 기타 장식용 제품		
6913.10.00	-자기제의 것	5	0
6913.90.00	-기타	5	0
6914	도자제의 기타 제품		
6914.10.00	-자기제의 것	5	0
6914.90.00	-기타	5	0
70	유리와 유리제품		
7001.00.00	파유리 및 유리의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 유리괴	0	0
7002	유리제의 구(제 7018 호의 마이크로스피어는 제외한다), 봉 또는 관(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002.10.00	-구	0	0
7002.20.00	-봉	0	0
7002.3	-관		
7002.31.00	--용융석영 또는 기타 용융실리카제의 것	0	0
7002.32.00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섭씨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이하인 기타 유리제의 것	0	0
7002.39.00	--기타	0	0
7003	주입법 및 롤법으로 제조한 유리(쉬트상 또는 프로파일상의 것에 한하고,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003.1	-망입하지 아니한 쉬트유리		
7003.12.00	--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또는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갖는 것	5	0
7003.19.00	--기타	5	0
7003.20.00	-망입 쉬트유리	5	0
7003.30.00	-프로파일	5	0
7004	인상법 및 취입법으로 제조한 유리(쉬트상의 것에 한하고,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004.20.00	-유리[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또는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갖는 것에 한한다]	0	0
7004.90.00	-기타 유리	0	0
7005	플로트유리 및 표면을 연마한 유리(쉬트상의 것에 한하고,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005.10.00	-망입하지 않은 유리(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갖는 것에 한 한다)	5	0
7005.2	-기타 망입하지 아니한 유리		
7005.21.00	--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또는 단순히 표면을 연마한 것	5	0
7005.29.00	--기타	5	0
7005.30.00	-망입유리	0	0
7006.00.00	제 7003 호·제 7004 호 또는 제 7005 호의 유리(구부린 것, 가장자리 가공한 것, 조각한 것, 천공한 것·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서, 틀을 씌운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부착한 것은 제외한다)	5	0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접합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		
7007.1	-강화 안전유리		
7007.11	--차량·항공기·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		
7007.11.1	---자동차용의 것		
7007.11.11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품으로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7007.11.19	----기타	5	0
7007.11.90	---기타	5	0
7007.19.00	--기타	5	0
7007.2	-접합 안전유리		
7007.21	--차량·항공기·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		
7007.21.1	---자동차용의 것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7013.41.00	--납 크리스탈제의 것	0	0
7013.42.00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섭씨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이하인 유리제의 것	5	0
7013.49.00	--기타	5	0
7013.9	-기타 유리제품		
7013.91.00	--납 크리스탈제의 것	0	0
7013.99	--기타		
7013.99.10	---다음의 물품: (가) 가정에서 장식품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조상, (나) 조상	0	0
7013.99.90	---기타	5	0
7014	신호용 유리제품 및 유리제의 광학용품(제 7015 호의 것은 제외하고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014.00.20	---조명 목적을 위한 반사경과 굴절기로서 다음의 것과 함께 사용되는 종류의 것: (가)제 8701.20.00 호·제 8702 호·제 8703 호·제 8704 호 또는 제 8705 호의 차량, (나) 제 8716 호의 연결식 차량용의 트레일러	5	5
7014.00.90	---기타	0	0
7015	시계용 유리 및 이와 유사한 유리, 안경용(시력교정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의 유리(곡면의 것·구부린 것·중공의 것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들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공구면유리와 그 세그먼트		
7015.10.0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0	0
7015.90.00	-기타	0	0
7016	압축 또는 주형 유리제의 포장용 블록·슬래브·벽돌·스퀘어·타일 및 기타 제품(망입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건축용 또는 건설용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유리제의 입방체 및 기타 유리세공품(뒷면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모자이크용 또는 이와 유사한 장식용의 것에 한한다), 레드라이트 및 이와 유사한 것, 블록·패널·플레이트·쉘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다공 또는 다포유리		
7016.10.00	-유리제의 입방체 및 기타 유리세공품(뒷면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모자이크용 또는 이와 유사한 장식용의 것에 한한다)	0	0
7016.90.00	-기타	0	0
7017	실험실용·위생용 또는 약제용의 유리제품(눈금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017.10.00	-용융석영 또는 기타 용융실리카제의 것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7007.21.11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품으로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7007.21.19	----기타	5	0
7007.21.90	---기타	5	0
7007.29.00	--기타	5	0
7008.00.00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닛	5	0
7009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7009.10	-백미러(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7009.10.10	---제 8702 호, 제 8703 호 또는 제 8704 호의 차량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7009.10.90	---기타	5	0
7009.9	-기타		
7009.91.00	--틀이 붙지 아니한 것	5	0
7009.92.00	--틀이 붙은 것	5	0
7010	유리제의 카보이·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약병·앰플 및 기타 용기(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유리제의 보존병, 유리제의 마개·뚜껑 및 기타 마개류		
7010.10.00	-앰플	5	0
7010.20.00	-마개·뚜껑 및 기타 마개류	0	0
7010.9	-기타		
7010.90.10	---약병(0.15 리터 이하인 것)	5	0
7010.90.90	---기타	0	0
7011	밀폐되지 아니한 유리제의 외피(벌브와 튜브를 포함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전구·음극선관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착물이 없는 것에 한한다)		
7011.10.00	-전등용의 것	0	0
7011.20.00	-음극선관용의 것	0	0
7011.90.00	-기타	0	0
7013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제 7010 호 또는 제 7018 호의 것을 제외한다)		
7013.10.00	-유리 도자제의 것	0	0
7013.2	-굽달린 음료용 유리컵류(유리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22.00	--납 크리스탈제의 것	0	0
7013.28.00	--기타	5	0
7013.3	-기타 음료용 유리컵류(유리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33.00	--납 크리스탈제의 것	0	0
7013.37.00	--기타	5	0
7013.4	-식탁용의 유리제품(음료용 유리컵류는 제외한다) 또는 주방용 유리제품(유리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7101	천연 또는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실로 꿴 것·장착 또는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천연 또는 양식진주(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7101.10.00	-천연진주	0	0
7101.2	-양식진주		
7101.21.00	--가공하지 아니한 것	0	0
7101.22.00	--가공한 것	0	0
7102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장착 또는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7102.10.00	-선별하지 아니한 것	0	0
7102.2	-공업용의 것		
7102.21.00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쪼갠 것	0	0
7102.29.00	--기타	0	0
7102.3	-공업용이 아닌 것		
7102.31.00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쪼갠 것	0	0
7102.39.00	--기타	0	0
7103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실로 꿴 것·장착 또는 세트로된 것은 제외한다),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		
7103.10.00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거칠게 성형한 것	0	0
7103.9	-기타 다른 방법으로 가공한 것		
7103.91.00	--루비·사파이어 및 에메랄드	0	0
7103.99.00	--기타	0	0
7104	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또는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실로 꿴 것, 장착 또는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또는 반귀석(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		
7104.10.00	-압전기용 석영	0	0
7104.20.00	-기타(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거칠게 성형한 것에 한한다)	0	0
7104.90.00	-기타	0	0
7105	천연 또는 합성의 귀석 또는 반귀석의 더스트와 분		
7105.10.00	-다이아몬드의 것	0	0
7105.90.00	-기타	0	0
7017.20.00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이하인 기타 유리제의 것	5	0
7017.90.00	-기타	5	0
7018	유리제의 비드·모조진주·모조귀석 또는 반귀석 및 이와 유사한 유리세공품과 모조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이들의 제품, 인체용의 것을 제외한 유리안구, 소상과 램프가공의 기타 장식용 유리제품(모조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지름이 1 밀리미터 이하인 유리제의 마이크로스피어		
7018.10.00	-유리제의 비드·모조진주·모조귀석 또는 반귀석 및 이와 유사한 유리세공품	0	0
7018.20.00	-지름이 1 밀리미터 이하인 유리제의 마이크로스피어	5	0
7018.90.00	-기타	0	0
7019	유리섬유(글라스 울을 포함한다) 및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		
7019.1	-슬라이버·로빙·사 및 단연사		
7019.11.00	--단연사(길이가 50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0
7019.12.00	--로빙	5	0
7019.19.00	--기타	5	0
7019.3	-얇은 쉬트(보일)·웨브·매트·매트리스·보드 및 이와 유사한 부직포 제품		
7019.31.00	--매트	5	0
7019.32.00	--얇은 쉬트(보일)	0	0
7019.39	--기타		
7019.39.10	---글라스 울의 것	5	0
7019.39.90	---기타	5	0
7019.40.00	-로빙직물	5	0
7019.5	-기타 직물		
7019.51.00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	5	0
7019.52.00	--폭이 30 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0 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 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에 한한다)	5	0
7019.59.00	--기타	5	0
7019.90	-기타		
7019.90.10	---글라스 울 및 그 제품	5	0
7019.90.90	---기타	5	0
7020	유리제의 기타 제품		
7020.00.10	---광섬유 예비성형품(광섬유 제조에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	5	0
7020.00.90	---기타	0	0
71	천연 또는 양식 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7112.91.00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기타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0	0
7112.92.00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기타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0	0
7112.99.00	--기타	0	0
7113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7113.1	-귀금속제의 것(귀금속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7113.11.00	--은제의 것(기타 귀금속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0
7113.19.00	--기타 귀금속제의 것(귀금속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0
7113.20.00	-귀금속을 입힌 비(卑)금속제의 것	5	0
7114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7114.1	-귀금속제의 것(귀금속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7114.11.00	--은제의 것(기타 귀금속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0
7114.19.00	--기타 귀금속제의 것(귀금속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0
7114.20.00	-귀금속을 입힌 비(卑)금속제의 것	5	0
7115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기타 제품		
7115.10.00	-촉매제(백금제의 와이어 클로스 또는 그릴상의 것에 한한다)	0	0
7115.90.00	-기타	0	0
7116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의 제품		
7116.10.00	-천연 또는 양식진주제의 것	5	0
7116.20.00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의 것	5	0
7117	모조신변장식용품		
7117.1	-비(卑)금속제의 것(귀금속을 도금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7117.11.00	--커프링크(cuff-link)와 장식용 단추	5	0
7117.19.00	--기타	5	0
7117.90.00	-기타	5	0
7118	주화		
7118.10.00	-주화(금화는 제외하며, 법정통화가 아닌 것에 한한다)	0	0
7118.90.00	-기타	0	0
72	철강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7106	은(금 또는 백금으로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반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7106.10.00	-분	0	0
7106.9	-기타		
7106.91.00	--가공하지 아니한 것	0	0
7106.92.00	--반제품의 것	0	0
7107.00.00	은을 입힌 비(卑)금속(반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7108	금(백금으로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반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7108.1	-화폐용이 아닌 것		
7108.11.00	--분	0	0
7108.12.00	--기타 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	0	0
7108.13.00	--기타 반제품 형상의 것	0	0
7108.20.00	-화폐용의 것	0	0
7109.00.00	금을 입힌 비(卑)금속 또는 은(반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7110	백금(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반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7110.1	-플라티늄		
7110.11.00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0	0
7110.19.00	--기타	0	0
7110.2	-팔라듐		
7110.21.00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0	0
7110.29.00	--기타	0	0
7110.3	-로듐		
7110.31.00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0	0
7110.39.00	--기타	0	0
7110.4	-이리듐·오스뮴 및 루테늄		
7110.41.00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0	0
7110.49.00	--기타	0	0
7111.00.00	백금을 입힌 비(卑)금속, 은 또는 금(반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7112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7112.30.00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	0	0
7112.9	-기타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7201	선철과 스피그라이즌(피그 · 블록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		
7201.10.0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0.5 퍼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0
7201.20.0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0.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	0
7201.50.00	-합금선철, 스피그라이즌	0	0
7202	페로얼로이		
7202.1	-페로망간		
7202.11.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2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0	0
7202.19.00	--기타	0	0
7202.2	-페로실리콘		
7202.21.00	--실리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0	0
7202.29.00	--기타	0	0
7202.30.00	-페로실리코망간	0	0
7202.4	-페로크로뮴		
7202.41.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4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0	0
7202.49.00	--기타	0	0
7202.50.00	-페로실리코크로뮴	0	0
7202.60.00	-페로니켈	0	0
7202.70.00	-페로몰리브데늄	0	0
7202.80.00	-페로텅스텐 및 페로실리코텅스텐	0	0
7202.9	-기타		
7202.91.00	--페로티타늄 및 페로실리코티타늄	0	0
7202.92.00	--페로바나듐	0	0
7202.93.00	--페로니오븀	0	0
7202.99.00	--기타	0	0
7203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과 기타 해면질의 철제품(럼프 · 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순도가 최저 전 중량의 99.94 퍼센트인 철(럼프 · 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7203.10.00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0	0
7203.90.00	-기타	0	0
7204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7204.10.00	-주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7204.2	-합금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7204.21.00	--스테인리스강의 것	0	0
7204.29.00	--기타	0	0
7204.30.00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7204.4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		
7204.41.00	--선삭 · 셰이빙 · 칩 · 밀링웨이스트 · 톱밥 · 파일링 · 트리밍 및 스탬핑(번들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7204.49.00	--기타	0	0
7204.50.00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5	0
7205	입과 분(선철 · 스피그라이즌 및 철강의 것에 한한다)		
7205.10.00	-입	0	0
7205.2	-분		
7205.21.00	--합금강의 것	0	0
7205.29.00	--기타	0	0
7206	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철과 비합금강(제 7203 호의 철은 제외한다)		
7206.10.00	-잉곳	0	0
7206.90.00	-기타	5	0
7207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		
7207.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0.25 퍼센트 미만인 것		
7207.11.00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에 한한다)	5	0
7207.12.00	--기타[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에 한한다]	5	0
7207.19.00	--기타	5	0
7207.2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0.25 퍼센트 이상인 것	5	0
7208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압연한 것에 한하고, 클래드 · 도금 또는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08.10.00	-코일상의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하고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5	0
7208.2	-기타[코일상의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하고 산세(酸洗)한 것에 한한다]		
7208.25.00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5	0
7208.26.00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5	0
7208.27.00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5	0
7208.3	-기타(코일상의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208.36.00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0
7208.37.00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0
7208.38.00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5	0
7208.39.00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5	0
7208.40.00	-코일상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하고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	5	0
7208.5	-기타(코일상이 아닌 것으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7208.51.00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0
7208.52.00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0
7208.53.00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5	0
7208.54.00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5	0
7208.90.00	-기타	5	5
7209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에 한하고,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09.1	-코일상의 것으로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		
7209.15.00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인 것	5	5
7209.16.00	--두께가 1 밀리미터 초과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5	5
7209.17.00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5
7209.18.00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5	5
7209.2	-코일상이 아닌 것으로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7209.25.00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인 것	5	5
7209.26.00	--두께가 1 밀리미터 초과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5	5
7209.27.00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5
7209.28.00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5	5
7209.90.00	-기타	5	5
7210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7210.1	-주석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7210.11.00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7210.12.00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7210.20.00	-납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함석판을 포함한다)	0	0
7210.30.00	-아연으로 전해도금 또는 도포한 것	5	5
7210.4	-기타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7210.41.00	--파형의 것	5	5
7210.49.00	--기타	5	5
7210.50.00	-산화크로뮴 또는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5	5
7210.6	-알루미늄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7210.61.00	--알루미늄-아연 합금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5	5
7210.69.00	--기타	5	5
7210.70.00	-페인트한 것·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5	5
7210.90.00	-기타	5	5
7211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고,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11.1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7211.13.00	--4 면을 압연한 것 또는 크로스드박스패스로 한 것(폭이 15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 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하며, 코일상의 것과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5	0
7211.14.00	--기타(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5	0
7211.19.00	--기타	5	0
7211.2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7211.23.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0.25 퍼센트 미만인 것	5	5
7211.29.00	--기타	5	5
7211.90.00	-기타	5	5
7212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7212.10.00	-주석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0
7212.20.00	-아연으로 전해도금 또는 도포한 것	5	5
7212.30.00	-기타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5	5
7212.40.00	-페인트한 것·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5	5
7212.50.00	-기타의 다른 방법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5	5
7212.60.00	-클래드한 것	5	5
7213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7213.10.0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홈 또는 기타 변형을 포함하는 것	5	0
7213.20.0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에 한한다]	5	0
7213.9	-기타		
7213.91.00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4 밀리미터 미만인 것	5	0
7213.99.00	--기타	5	0
7214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단조·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열간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7214.10.00	-단조한 것	5	0
7214.20.0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홈 또는 기타 변형을 포함하는 것이나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5	0
7214.30.0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에 한한다]	5	0
7214.9	-기타		
7214.91.00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5	0
7214.99.00	--기타	5	0
7215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		
7215.10	-쾌삭강의 것(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215.10.10	---제 72 류의 주 제 1 호 타목에서 정의한 "플랫서클" 및 "변형된 직사각형"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7215.10.90	---기타	5	0
7215.50	-기타(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215.50.10	---제 72 류의 주 제 1 호 타목에서 정의한 "플랫서클" 및 "변형된 직사각형"	5	0
7215.50.90	---기타	5	0
7215.90.00	-기타	5	0
7216	철 또는 비합금강의 형강		
7216.10.00	-유(U)·아이(I) 또는 에이치(H)형강(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5	0
7216.2	-엘(L) 또는 티(T)형강(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7216.21.00	--엘(L)형강	5	0
7216.22.00	--티(T)형강	5	0
7216.3	-유(U)·아이(I) 또는 에이치(H)형강(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7216.31.00	--유(U)형강	5	0
7216.32.00	--아이(I)형강	5	0
7216.33.00	--에이치(H)형강	5	0
7216.40.00	-엘(L) 또는 티(T)형강(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	5	0
7216.50.00	-기타 형강(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0
7216.6	-형강(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216.61.00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5	0
7216.69.00	--기타	5	0
7216.9	-기타		
7216.91.00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한 것	5	0
7216.99.00	--기타	5	0
7217	철 또는 비합금강의 선		
7217.10.00	-도금 또는 도포하지 아니한 것(연마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0
7217.20.00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5	0
7217.30.00	-기타 비(卑)금속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5	0
7217.90.00	-기타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7218	스테인리스강(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7218.10.00	-잉곳 및 기타 일차형상의 것	5	0
7218.9	-기타		
7218.91.00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인 것	5	0
7218.99.00	--기타	5	0
721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7219.1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7219.11.00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7219.12.00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0
7219.13.00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5	0
7219.14.00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7219.2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코일상의 것은 제외한다)		
7219.21.00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0
7219.22.00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0
7219.23.00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5	0
7219.24.00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5	0
7219.3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7219.31.00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5	0
7219.32.00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5	0
7219.33.00	--두께가 1 밀리미터 초과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5	0
7219.34.00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0
7219.35.00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5	0
7219.90.00	-기타	5	0
722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7220.1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7220.11.00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5	0
7220.12.00	--두께가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5	0
7220.20.0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5	0
7220.90.00	-기타	5	0
7221.00.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5	0
7222	스테인리스강의 기타의 봉, 스테인리스강의 형강		
7222.1	-봉(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222.11.00	--횡단면이 원형인 것	0	0
7222.19.00	--기타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7222.20.00	-봉(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0
7222.30.00	-기타 봉	5	0
7222.40.00	-형강	5	0
7223.00.00	스테인리스강의 선	5	0
7224	기타 합금강(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 기타 합금강의 반제품		
7224.10.00	-잉곳 및 기타 일차형상의 것	5	0
7224.90.00	-기타	5	0
7225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7225.1	-규소전기강의 것		
7225.11.00	--방향성(方向性)인 것	5	0
7225.19.00	--기타	5	0
7225.30.00	-기타[코일상의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0
7225.40.00	-기타[코일상의 것을 제외하며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0
7225.50.00	-기타[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0
7225.9	-기타		
7225.91.00	--아연으로 전해도금 또는 도포한 것	5	0
7225.92.00	--기타 다른 방법으로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5	0
7225.99.00	--기타	5	0
7226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7226.1	-규소전기강의 것		
7226.11.00	--방향성(方向性)인 것	5	0
7226.19.00	--기타	5	0
7226.20.00	-고속도강의 것	5	0
7226.9	-기타		
7226.91.00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5	0
7226.92.0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5	0
7226.99.00	--기타	5	0
7227	기타 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7227.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7.20	-실리코망간강의 것		
7227.20.10	---제 72 류의 주 제 1 호 타목에서 정의한 "플랫서클" 및 "변형된 직사각형"	5	0
7227.20.20	---다음의 물품, NSA: (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0.35 퍼센트 미만인 것, (나)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2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5	0
7227.20.90	---기타	5	0
7227.90	-기타		
7227.90.10	---다음의 물품: (가) 고합금강의 것, (나) 제 72 류의 주 제 1 호 타목에서 정의한 "플랫서클" 및 "변형된 직사각형"	5	0
7227.90.90	---기타	5	0
7228	기타 합금강의 기타의 봉, 기타 합금강의 형강,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의 중공드릴봉		
7228.10.00	-고속도강의 봉	5	0
7228.20	-실리코망간강의 봉		
7228.20.10	---제 72 류의 주 제 1 호 파목에서 정의한 "플랫서클" 및 "변형된 직사각형"	5	0
7228.20.2	---다음의 물품, NSA: (가) 탄소 함유량이 전 중량의 0.35 퍼센트 미만인 것, (나)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2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7228.20.21	----냉간성형이나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5	0
7228.20.29	----기타	5	0
7228.20.90	---기타	5	0
7228.30	-기타의 봉(열간압연 · 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228.30.10	---다음의 물품: (가) 고합금강의 것, (나) 제 72 류의 주 제 1 호 파목에서 정의한 "플랫서클" 및 "변형된 직사각형"	5	0
7228.30.90	---기타	5	0
7228.40	-기타의 봉(단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228.40.10	---다음의 물품: (가) 고합금강의 것, (나) 제 72 류의 주 제 1 호 파목에서 정의한 "플랫서클" 및 "변형된 직사각형"	5	0
7228.40.90	---기타	5	0
7228.50.00	-기타의 봉[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0
7228.60	-기타 봉		
7228.60.10	---다음의 물품: (가) 고합금강의 것, (나) 제 72 류의 주 제 1 호 파목에서 정의한 "플랫서클" 및 "변형된 직사각형"	5	0
7228.60.90	---기타	5	0
7228.70.00	-형강	5	0
7228.80.00	-중공드릴봉	5	0
7229	기타 합금강의 선		
7229.20.00	-실리코망간강의 것	5	0
7229.90	-기타		
7229.90.10	---고속도강의 것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7229.90.90	---기타	5	0
73	철강의 제품		
7301	철강제의 강시판(천공 또는 조립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철강제의 용접된 형강		
7301.10.00	-강시판	5	0
7301.20.00	-형강	5	0
7302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궤조·첵궤조와 치형궤조·첨단궤조·교차구류·전철봉과 기타 크로싱피스·침목(크로스타이)·계목판·좌철·좌철쐐기·저판(베이스플레이트)·궤조클립·노반·격재 및 궤조의 접속 또는 고착에 전용되는 기타 재료에 한한다]		
7302.10.00	-궤조	5	0
7302.30.00	-첨단궤조·교차구류·전철봉과 기타 크로싱피스	5	0
7302.40.00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5	0
7302.90.00	-기타	5	0
7303.00.00	주철제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5	0
7304	철강제(주철제는 제외한다)의 관과 중공프로파일(무계목의 것에 한한다)		
7304.1	-오일 또는 가스 배관용의 파이프라인		
7304.11.00	--스테인리스강의 것	5	0
7304.19.00	--기타	5	0
7304.2	-유정용 또는 가스정용의 케이싱·튜빙과 드릴파이프		
7304.22.00	--스테인리스강제의 드릴파이프	5	0
7304.23.00	--기타 드릴파이프	5	0
7304.24.00	--기타(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5	0
7304.29.00	--기타	5	0
7304.3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철제 또는 비합금강제의 것에 한한다)		
7304.31.00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5	0
7304.39.00	--기타	5	0
7304.4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7304.41.00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5	0
7304.49.00	--기타	5	0
7304.5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기타 합금강제의 것에 한한다)		
7304.51.00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5	0
7304.59.00	--기타	5	0
7304.90.00	-기타	5	0
7305	철강제의 기타 관(예: 용접·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7305.1	-오일 또는 가스 배관용의 파이프라인		
7305.11.00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 용접한 것	5	3
7305.12.00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에 한한다)	5	3
7305.19.00	--기타	5	5
7305.20.00	-유정용 또는 가스정용 케이싱	5	5
7305.3	-기타(용접한 것에 한한다)		
7305.31.00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	5	5
7305.39.00	--기타	5	5
7305.90.00	-기타	5	5
7306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 또는 용접·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		
7306.1	-오일 또는 가스 배관용의 파이프라인		
7306.11.00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5	5
7306.19.00	--기타	5	5
7306.2	-유정용 또는 가스정용의 케이싱과 튜빙		
7306.21.00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5	5
7306.29.00	--기타	5	5
7306.30.00	-기타(용접한 것에 한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철제 또는 비합금강제의 것에 한한다)	5	5
7306.40.00	-기타(용접한 것에 한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5	5
7306.50.00	-기타(용접한 것에 한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기타 합금강제의 것에 한한다)	5	5
7306.6	-기타(용접한 것에 한하며,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에 한한다)		
7306.61.00	--횡단면이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인 것	5	5
7306.69.00	--기타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5	5
7306.90.00	-기타	5	5
7307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엘보·슬리브)		
7307.1	-주조한 연결구류		
7307.11.00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제의 것	5	0
7307.19.00	--기타	5	0
7307.2	-기타(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7307.21.00	--플랜지	5	0
7307.22.00	--나선가공한 엘보·벤드와 슬리브	5	0
7307.23.00	--바트용접한 연결구	5	0
7307.29.00	--기타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7307.9	-기타		
7307.91.00	--플랜지	5	0
7307.92.00	--나선가공한 엘보·밴드와 슬리브	5	0
7307.93.00	--바트용접한 연결구	5	0
7307.99.00	--기타	5	0
7308	철강제의 구조물(제 9406.00.00 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봉·형강·관 및 이와 유사한 것		
7308.10.00	-다리와 교량	5	0
7308.20.00	-탑과 격자주	5	0
7308.30.00	-문·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5	0
7308.40.00	-비계·차단기·지주 또는 갱도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5	0
7308.90.00	-기타	5	0
7309.00.00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저장조·탱크·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은 제외하고,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0
7310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탱크·통·드럼·캔·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은 제외하고, 용적이 300 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나,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310.10.00	-용적이 50 리터 이상인 것	5	0
7310.2	-용적이 50 리터 미만인 것		
7310.21.00	--납땜 또는 크림핑으로 봉합되는 캔	5	0
7310.29.00	--기타	5	0
7311.00.00	철강제의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의 것에 한한다)	5	0
7312	철강제의 연선·로프·케이블·엷은 밴드·사슬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312.10.00	-연선·로프 및 케이블	5	0
7312.90.00	-기타	5	0
7313.00.00	철강제의 유자선, 철강제의 대 또는 평선을 꼰 것(유자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과 느슨하게 꼰 2 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0	0
7314	철강선제의 클로드(엔드리스밴드를 포함한다)·그릴·망·울타리, 철강제의 익스팬디드 메탈		
7314.1	-직조한 클로드		
7314.12.00	--기계류용 엔드리스밴드(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5	0
7314.14.00	--기타 직조한 클로드(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5	0
7314.19.00	--기타	0	0
7314.20.00	-그릴·망 및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3 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의 크기가 100 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0	0
7314.3	-기타 그릴·망 및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에 한한다)		
7314.31.00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0
7314.39.00	--기타	0	0
7314.4	-기타 클로드·그릴·망 및 울타리		
7314.41.00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0
7314.42.00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0	0
7314.49.00	--기타	0	0
7314.50.00	-익스팬디드메탈	5	0
7315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		
7315.1	-마디가 있는 링크체인과 그 부분품		
7315.11.00	--롤러체인	5	0
7315.12.00	--기타 체인	5	0
7315.19.00	--부분품	5	0
7315.20.00	-스키드체인	0	0
7315.8	-기타 체인		
7315.81.00	--스터드링크	0	0
7315.82.00	--기타(용접한 링크에 한한다)	5	0
7315.89.00	--기타	5	0
7315.90.00	-기타 부분품	5	0
7316.00.00	철강제의 닻과 그 부분품	5	0
7317	철강제의 못·압정·제도용 핀·파형 못·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가 기타 다른 재료제인지 여부를 불문하나 두부가 동인 물품은 제외한다)		
7317.00.10	---호스-슈즈 못(Horse-shoe nails)	0	0
7317.00.90	---기타	5	0
7318	철강제의 스크루·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7318.1	-나선가공한 제품		
7318.11.00	--코치 스크루	5	0
7318.12.00	--기타 목재 스크루	5	0
7318.13.00	--스크루훅과 스크루링	0	0
7318.14.00	--셀프태핑 스크루	5	0
7318.15.00	--기타 스크루 및 볼트(너트 또는 와셔가 붙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7323	철강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7323.10.00	-철강의 울,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 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5	0
7323.9	-기타		
7323.91.00	--주철제의 것으로 법랑제가 아닌 것	0	0
7323.92.00	--주철제의 것으로 법랑제의 것	5	0
7323.93.00	--스테인리스강의 것	5	0
7323.94.00	--철강(주철을 제외한다)제의 것으로 법랑제의 것	5	0
7323.99.00	--기타	5	0
7324	철강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324.10.00	-설거지통과 세면대(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5	0
7324.2	-목욕통		
7324.21.00	--주철제의 것(법랑제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0
7324.29.00	--기타	5	0
7324.90.0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5	0
7325	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		
7325.10.00	-비가단주철제의 것	5	0
7325.9	-기타		
7325.91.00	--분쇄기용의 그라인딩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5	0
7325.99.00	--기타	5	0
7326	철강제의 기타 제품		
7326.1	-단조 또는 압착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326.11.00	--분쇄기용의 그라인딩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5	0
7326.19.00	--기타	5	5
7326.20.00	-철강선제의 제품	5	0
7326.90	-기타		
7326.90.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품으로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0
7326.90.90	---기타	5	0
74	동과 그 제품		
7401.00.00	동의 매트, 시멘트동(침전동)	0	0
7402.00.00	정제하지 아니한 동, 전해정제용의 동 양극	0	0
7403	정제한 동과 동합금(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403.1	-정제한 동		
7403.11.00	--음극과 음극의 형재	0	0
7403.12.00	--와이어바	0	0
7403.13.00	--빌레트	0	0
7403.19.00	--기타	0	0
7403.2	-동합금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7318.16.00	--너트	5	0
7318.19.00	--기타	5	0
7318.2	-나선가공하지 아니한 제품		
7318.21.00	--스프링와셔와 기타 록와셔	5	0
7318.22.00	--기타 와셔	5	0
7318.23.00	--리벳	5	0
7318.24.00	--코터와 코터핀	5	0
7318.29.00	--기타	5	0
7319	철강제의 수봉침·수편침·돗바늘·코바늘·자수용 천공수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제의 안전핀과 기타 핀(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319.40.00	-안전핀과 기타 핀	0	0
7319.90.00	-기타	0	0
7320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		
7320.10.00	-판상 스프링과 그 판	5	3
7320.20.00	-나선용 스프링	5	3
7320.90.00	-기타	5	5
7321	철강제의 스토브·레인지·화상·조리기(중앙난방용의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바베큐·화로·가스풍로·가열판 및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7321.1	-조리용 기구와 가열판		
7321.11.00	--가스연료용의 것 또는 가스와 기타 연료 겸용의 것	5	0
7321.12.00	--액체연료용의 것	5	0
7321.19.00	--기타(고체연료용의 기구를 포함한다)	5	0
7321.8	-기타 기기		
7321.81.00	--가스연료용의 것 또는 가스와 기타 연료 겸용의 것	5	0
7321.82.00	--액체연료용의 것	5	0
7321.89.00	--기타(고체연료용의 기구를 포함한다)	5	0
7321.90.00	-부분품	5	0
7322	철강제의 방열기(중앙난방용의 것에 한하고, 전기가열식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철강제의 동력구동식의 팬 또는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냉풍 또는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분기를 포함하고, 전기가열식의 것은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7322.1	-방열기와 그 부분품		
7322.11.00	--주철제의 것	5	3
7322.19.00	--기타	5	0
7322.90.00	-기타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7403.21.00	--동-아연의 합금(황동)	0	0
7403.22.00	--동-주석의 합금(청동)	0	0
7403.29.00	--기타 동합금(제 7405.00.00 호의 마스터얼로이는 제외한다)	0	0
7404.00.00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7405.00.00	동의 마스터얼로이	0	0
7406	동의 분과 플레이크		
7406.10.00	-비층상조직의 분	0	0
7406.20.00	-층상조직의 분, 플레이크	0	0
7407	동의 봉과 프로파일		
7407.10.00	-정제한 동의 것	5	0
7407.2	-동합금의 것		
7407.21.00	--동-아연 합금의 것(황동)	5	0
7407.29.00	--기타	5	0
7408	동의 선		
7408.1	-정제한 동의 것		
7408.11.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0
7408.19.00	--기타	5	0
7408.2	-동합금의 것		
7408.21.00	--동-아연 합금의 것(황동)	5	0
7408.22.00	--동-니켈 합금의 것(백동) 또는 동-니켈-아연 합금의 것(양백)	5	0
7408.29.00	--기타	5	0
7409	동의 판·쉬트 및 스트립(두께가 0.1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7409.1	-정제한 동의 것		
7409.11.00	--코일상의 것	5	0
7409.19.00	--기타	5	0
7409.2	-동-아연 합금의 것(황동)		
7409.21.00	--코일상의 것	5	0
7409.29.00	--기타	5	0
7409.3	-동-주석 합금의 것(청동)		
7409.31.00	--코일상의 것	5	0
7409.39.00	--기타	5	0
7409.40.00	-동-니켈 합금의 것(백동) 또는 동-니켈-아연 합금의 것(양백)	5	0
7409.90.00	-기타 동 합금의 것	5	0
7410	동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판지·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7410.1	-뒷면을 붙이지 아니한 것		
7410.11.00	--정제한 동의 것	5	0
7410.12.00	--동합금의 것	5	0
7410.2	-뒷면을 붙인 것		
7410.21.00	--정제한 동의 것	5	0
7410.22.00	--동합금의 것	5	0
7411	동제의 관		
7411.10.00	-정제한 동의 것	5	0
7411.2	-동합금의 것		
7411.21.00	--동-아연 합금의 것(황동)	5	0
7411.22.00	--동-니켈 합금의 것(백동) 또는 동-니켈-아연 합금의 것(양백)	5	0
7411.29.00	--기타	5	0
7412	동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엘보·슬리브)		
7412.10.00	-정제한 동의 것	5	0
7412.20.00	-동합금의 것	5	0
7413.00.00	동제의 연선·케이블·엷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5	0
7415	동제의 못·압정·제도용 핀·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동제 또는 동제의 두부를 가지는 철강제의 것에 한한다), 동제의 스크루·볼트·너트·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7415.10.00	-못과 압정·제도용 핀·스테이플 및 이와 유사한 물품	5	0
7415.2	-나선가공을 하지 아니한 기타 물품		
7415.21.00	--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5	0
7415.29.00	--기타	5	0
7415.3	-기타 나선가공한 물품		
7415.33.00	--스크루, 볼트와 너트	5	0
7415.39.00	--기타	5	0
7418	동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동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동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418.10.00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5	0
7418.20.00	-위생용품과 이들의 부분품	5	0
7419	동제의 기타 제품		
7419.10.00	-체인과 그 부분품	0	0
7419.9	-기타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7419.91.00	--주조·주형·압착 또는 단조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0
7419.99.00	--기타	5	0
75	니켈과 그 제품		
7501	니켈의 매트·소결한 산화니켈 및 니켈제련의 기타 중간생산물		
7501.10.00	-니켈의 매트	0	0
7501.20.00	-소결한 산화니켈 및 니켈제련의 기타 중간생산물	0	0
7502	니켈의 괴		
7502.10.00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	0	0
7502.20.00	-니켈 합금	0	0
7503.00.00	니켈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7504.00.00	니켈의 분과 플레이크	0	0
7505	니켈의 봉·프로파일 및 선		
7505.1	-봉과 프로파일		
7505.11.00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의 것	0	0
7505.12.00	--니켈 합금의 것	0	0
7505.2	-선		
7505.21.00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의 것	0	0
7505.22.00	--니켈 합금의 것	0	0
7506	니켈의 판·쉬트·스트립 및 박		
7506.10.00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의 것	0	0
7506.20.00	-니켈 합금의 것	0	0
7507	니켈제의 관과 관연결구류(예: 커플링·엘보·슬리브)		
7507.1	-관		
7507.11.00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의 것	0	0
7507.12.00	--니켈 합금의 것	0	0
7507.20.00	-관연결구류	5	0
7508	니켈제의 기타 제품		
7508.10.00	-니켈선제의 클로드·그릴 및 망	0	0
7508.90.00	-기타	0	0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01	알루미늄의 괴		
7601.10.00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0	0
7601.20.00	-알루미늄 합금	0	0
7602.00.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7603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7603.10.00	-비층상조직의 분	0	0
7603.20.00	-층상조직의 분, 플레이크	0	0
7604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		
7604.10.00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	5	0
7604.2	-알루미늄 합금의 것		
7604.21.00	--중공 프로파일	5	0
7604.29.00	--기타	5	0
7605	알루미늄의 선		
7605.1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		
7605.11.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0
7605.19.00	--기타	5	0
7605.2	-알루미늄 합금의 것		
7605.21.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0
7605.29.00	--기타	5	0
7606	알루미늄의 판·쉬트 및 스트립(두께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7606.1	-직사각형의 것(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7606.11.00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	5	0
7606.12.00	--알루미늄 합금의 것	5	0
7606.9	-기타		
7606.91.00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	5	0
7606.92.00	--알루미늄 합금의 것	5	0
7607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인지 또는 지·판지·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는 제외한다)가 0.2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7607.1	-뒷면을 붙이지 아니한 것		
7607.11.00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5	0
7607.19.00	--기타	5	0
7607.20.00	-뒷면을 붙인 것	5	0
7608	알루미늄제의 관		
7608.10.00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	5	0
7608.20.00	-알루미늄 합금의 것	5	0
7609.00.00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엘보·슬리브)	5	0
7610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제 9406.00.00 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제의 판·봉·프로파일·관 및 이와 유사한 것		
7610.10.00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5	0
7610.90.00	-기타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7611.00.00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저장조·탱크·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0
7612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통·드럼·캔·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 또는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은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고,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7612.10.00	-연질의 튜브형 용기	0	0
7612.90.00	-기타	5	0
7613.00.00	알루미늄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에 한한다)	5	0
7614	알루미늄제의 연선·케이블·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614.10.00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5	0
7614.90.00	-기타	5	0
7615	알루미늄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제의 욕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615.10.00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욕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5	0
7615.20.00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5	0
7616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		
7616.10.00	-못·압정·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스크루·볼트·너트·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	5	0
7616.9	-기타		
7616.91.00	--알루미늄선제의 클로드·그릴·망 및 울타리	5	0
7616.99.00	--기타	5	0
78	연(鉛)과 그 제품		
7801	연의 괴		
7801.10.00	-정제한 연	0	0
7801.9	-기타		
7801.91.00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기타 원소의 것	0	0
7801.99.00	--기타	0	0
7802.00.00	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7804	연의 판·쉬트·스트립 및 박, 분과 플레이크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7804.1	-판·쉬트·스트립 및 박		
7804.11.00	--시트·스트립 및 박[두께(보강재는 제외한다)가 0.2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0	0
7804.19.00	--기타	0	0
7804.20.00	-분과 플레이크	0	0
7806	연제의 기타 제품		
7806.00.10	---다음의 물품: (가) 연의 봉·프로파일 및 선, (나) 연의 관 및 관연결구류(예: 커플링·엘보·슬리브)	0	0
7806.00.90	---기타	5	0
79	아연과 그 제품		
7901	아연의 괴		
7901.1	-합금하지 아니한 아연		
7901.11.00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99.99 퍼센트 이상인 것	0	0
7901.12.00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99.99 퍼센트 미만인 것	0	0
7901.20.00	-아연 합금	0	0
7902.00.00	아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7903	아연의 더스트·분과 플레이크		
7903.10.00	-아연의 더스트	0	0
7903.90.00	-기타	0	0
7904.00.00	아연의 봉·프로파일 및 선	0	0
7905.00.00	아연의 판·쉬트·스트립 및 박	0	0
7907	아연제의 기타 제품		
7907.00.10	---아연의 관 및 관연결구류(예: 커플링·엘보·슬리브)	0	0
7907.00.90	---기타	5	0
80	주석과 그 제품		
8001	주석의 괴		
8001.10.00	-합금하지 아니한 주석	0	0
8001.20.00	-주석 합금	0	0
8002.00.00	주석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8003.00.00	주석의 봉·프로파일 및 선	0	0
8007.00.00	주석제의 기타 제품	0	0
81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8101	텅스텐(울프람)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1.10.00	-분	0	0
8101.9	-기타		
8101.94.00	--텅스텐의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0	0
8101.96.00	--선	0	0
8101.97.00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8101.99.00	--기타	0	0
8102	몰리브데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2.10.00	-분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111.00.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0	0
8112	베릴륨·크로뮴·게르마늄·바나듐·갈륨·하프늄·인듐·니오븀(컬럼븀)·레늄 및 탈륨과 이들 금속의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12.1	-베릴륨		
8112.12.00	--괴, 분	0	0
8112.13.00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8112.19.00	--기타	0	0
8112.2	-크로뮴		
8112.21.00	--괴, 분	0	0
8112.22.00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8112.29.00	--기타	0	0
8112.5	-탈륨		
8112.51.00	--괴, 분	0	0
8112.52.00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8112.59.00	--기타	0	0
8112.9	-기타		
8112.92.00	--괴, 웨이스트와 스크랩, 분	0	0
8112.99.00	--기타	0	0
8113.00.00	서메트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0	0
82	비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이들의 부분품		
8201	수도구에 해당하는 것중 가래·삽·곡괭이·픽스·괭이·포크와 쇠스랑, 도끼·벌혹 및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의 전지가위, 낫·초절기·울타리 전단기·제재용 쐐기 및 기타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의 공구		
8201.10.00	-가래 및 삽	5	0
8201.30.00	-곡괭이·픽스·괭이와 쇠스랑	5	0
8201.40.00	-도끼·벌혹 및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5	0
8201.50.00	-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가금용 가위를 포함한다)	5	0
8201.60.00	-울타리전단기·양손용 전지가위 및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5	0
8201.90.00	-기타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의 수도구	5	0
8202	수동식 톱, 각종의 톱날(슬리팅·슬로팅 또는 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		
8202.10.00	-수동식 톱	5	0
8202.20.00	-띠톱의 날	5	0
8202.3	-원형톱날(슬리팅 또는 슬로팅 톱날을 포함한다)		
8202.31.00	--작용하는 부분이 강제인 것	5	0
8202.39.0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102.9	-기타		
8102.94.00	--몰리브데늄의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0	0
8102.95.00	--봉(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것은 제외한다)·프로파일·판·쉬트·스트립 및 박	0	0
8102.96.00	--선	0	0
8102.97.00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8102.99.00	--기타	0	0
8103	탄탈륨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3.20.00	-탄탈륨의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분	0	0
8103.3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8103.90.00	-기타	0	0
8104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4.1	-마그네슘의 괴		
8104.11.00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99.8 퍼센트 이상인 것	0	0
8104.19.00	--기타	0	0
8104.2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8104.30.00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줄밥·연삭설 및 입, 분	0	0
8104.90.00	-기타	0	0
8105	코발트의 매트 및 코발트 제련의 기타 중간생산물, 코발트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5.20.00	-코발트의 매트와 코발트 제련의 기타 중간생산물, 코발트의 괴, 분	0	0
8105.3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8105.90.00	-기타	0	0
8106.00.00	비스머드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0	0
8107	카드뮴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7.20.00	-카드뮴의 괴, 분	0	0
8107.3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8107.90.00	-기타	0	0
8108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8.20.00	-티타늄의 괴, 분	0	0
8108.3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8108.90.00	-기타	0	0
8109	지르코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9.20.00	-지르코늄의 괴, 분	0	0
8109.3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8109.90.00	-기타	0	0
8110	안티모니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10.10.00	-안티모니의 괴, 분	0	0
8110.2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8110.90.00	-기타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202.40.00	-체인톱의 날	0	0
8202.9	-기타 톱날		
8202.91.00	--금속가공용 직선형 톱날	5	0
8202.99.00	--기타	5	0
8203	줄·플라이어(절단용 플라이어를 포함한다)·집게·핀셋·금속절단용 가위·파이프커터·볼트크로퍼·천공펀치 및 이와 유사한 수공구		
8203.10.00	-줄과 이와 유사한 공구	5	0
8203.20.00	-플라이어(절단용 플라이어를 포함한다)·집게·핀셋과 이와 유사한 공구	5	0
8203.30.00	-금속 절단용의 가위 및 이와 유사한 공구	5	0
8203.40.00	-파이프커터·볼트크로퍼·천공펀치 및 이와 유사한 공구	5	0
8204	수동식 스패너와 렌치(토크미터렌치를 포함하나 탭렌치는 제외한다), 호환성 스패너소켓(손잡이가 달린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204.1	-수동식의 스패너와 렌치		
8204.11.00	--조정할 수 없는 것	5	0
8204.12.00	--조정할 수 있는 것	5	0
8204.20.00	-호환성 스패너소켓(손잡이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0
8205	수공구(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 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블로램프, 공작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외의 바이스·클램프 및 이와 유사한 것, 모루, 가반식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 또는 족답식의 그라인딩휠		
8205.10.00	-드릴링·드레딩 또는 태핑용 공구	5	0
8205.20.00	-해머와 슬레즈해머	5	0
8205.30.00	-목재가공용의 대패·끌·둥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5	0
8205.40.00	-스크루드라이버	5	0
8205.5	-기타 수공구(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한다)		
8205.51.00	--가정용공구	5	0
8205.59.00	--기타	5	0
8205.60.00	-블로램프	0	0
8205.70.00	-바이스·클램프 및 이와 유사한 것	5	0
8205.90.00	-기타(이 호의 앞의 소호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물품의 세트를 포함한다)	5	0
8206.00.00	제 8202 호부터 제 8205 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5	0
8207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스탬핑·펀칭·태핑·드레딩·드릴링·보링·브로칭·밀링·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8207.1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		
8207.13.00	--작용하는 부분이 서메트제인 것	5	0
8207.19.0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5	0
8207.20.00	-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	5	0
8207.30.00	-프레싱·스탬핑 또는 펀칭용의 공구	5	0
8207.40.00	-태핑 또는 드레딩용의 공구	5	0
8207.50.00	-드릴링용의 공구(착암기용의 것을 제외한다)	5	0
8207.60.00	-보링 또는 브로칭용의 공구	5	0
8207.70.00	-밀링용의 공구	5	0
8207.80.00	-터닝용의 공구	5	0
8207.90.00	-기타 호환성 공구	5	0
8208	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칼과 절단용 칼날		
8208.10.00	-금속 가공용의 것	5	0
8208.20.00	-목재 가공용의 것	5	0
8208.30.00	-주방용 기구 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의 것	5	0
8208.40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 기계용의 것		
8208.40.10	---우드치핑 기계용으로 설계제작된 것	5	0
8208.40.90	---기타	0	0
8208.90.00	-기타	5	0
8209.00.00	공구용의 판·봉·팁 및 이와 유사한 것(서메트제의 것으로서 장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0
8210.00.00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 또는 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개의 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0
8211	칼(톱니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에 한하며, 전정용 칼을 포함하고, 제 8208 호의 칼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날		
8211.1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5	0
8211.9	-기타		
8211.91.00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5	0
8211.92	--칼날이 고정된 기타의 칼		
8211.92.10	---주방용 칼, 정육점용 칼 및 도축용 칼	5	0
8211.92.90	---기타	5	0
8211.93.00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0	0
8211.94	--칼날		
8211.94.10	---식탁용 칼, 주방용 칼, 정육점용 칼 및 도축용 칼	5	0
8211.94.90	---기타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211.95	--비(卑)금속제의 손잡이		
8211.95.10	---식탁용 칼, 주방용 칼, 정육점용 칼 및 도축용 칼	5	0
8211.95.90	---기타	5	0
8212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로서 스트립상의 것을 포함한다)		
8212.10.00	-면도기	0	0
8212.20.00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로서 스트립상의 것을 포함한다)	0	0
8212.90.00	-기타 부분품	0	0
8213.00.00	가위·재단용의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및 이들의 날	0	0
8214	기타 칼붙이 제품(예: 조발기·정육점 또는 주방용 칼붙이·초퍼 및 민싱용 칼·종이용 칼),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세트 및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8214.10.00	-종이용 칼·편지개봉기·지우개용 칼·연필깎이와 그 날	0	0
8214.20.00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0	0
8214.90.00	-기타	0	0
8215	스푼·포크·국자·스키머·케이크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주방 또는 식탁용품		
8215.1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하나의 물품은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에 한한다)	5	0
8215.20.00	-위 물품이 조합된 기타의 세트	5	0
8215.9	-기타		
8215.91.00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5	0
8215.99.00	--기타	5	0
83	비금속제의 각종 제품		
8301	비(卑)금속제의 자물쇠(열쇠·다이얼 또는 전기작동식), 비(卑)금속제의 유금과 유금이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卑)금속제의 열쇠		
8301.10.00	-자물쇠	5	0
8301.20.00	-자동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자물쇠	5	5
8301.30.00	-가구에 사용되는 종류의 자물쇠	5	0
8301.40.00	-기타의 자물쇠	5	0
8301.50.00	-유금과 유금이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0	0
8301.60.00	-부분품	5	5
8301.70.00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5	5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302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마차·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 비(卑)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		
8302.10.00	-경첩	5	5
8302.20.00	-카스터	5	0
8302.30.00	-자동차용에 적합한 기타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5	5
8302.4	-기타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8302.41.00	--건물용으로 적합한 것	5	0
8302.42.00	--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5	0
8302.49.00	--기타	5	0
8302.50.00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5	0
8302.60.00	-자동도어 폐지기	5	0
8303.00.00	비(卑)금속제의 장갑한 또는 보강한 금고·스트롱박스와 스트롱룸용의 문과 저장실·현금 또는 문서용 상자 및 이와 유사한 것	5	0
8304.00.00	비(卑)금속제의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페이퍼트레이·페이퍼레스트·펜트레이·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 및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 또는 책상용 비품(제 9403 호의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5	0
8305	비(卑)금속제의 루스-리프식 바인더 또는 서류철용 피팅·서신용 클립·레터코너·서류용 클립·색인용 태그 및 이와 유사한 사무용품, 비(卑)금속제의 스트립상의 스테이플(예: 사무실용·가구류용·포장용의 것에 한한다)		
8305.10.00	-루스-리프식 바인더 또는 서류철용 피팅	5	0
8305.20.00	-스트립상의 스테이플	5	0
8305.90.0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5	0
8306	비(卑)금속제의 벨·징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식의 것은 제외한다), 비(卑)금속제의 소상과 기타 장식품, 비(卑)금속제의 사진틀·그림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비(卑)금속제의 거울		
8306.10.00	-벨·징 및 이와 유사한 것	5	0
8306.2	-소상과 기타 장식품		
8306.21.00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5	0
8306.29.00	--기타	5	0
8306.30.00	-사진틀·그림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거울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307	비(卑)금속제의 플렉시블 튜빙(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307.10.00	-철강제의 것	5	0
8307.90.00	-기타 비(卑)금속제의 것	5	0
8308	비(卑)금속제의 유금·유금이 붙은 프레임·버클·버클유금·훅·아이·아이릿 및 이와 유사한 것(의류·신발류·차양·핸드백·여행구 또는 기타 제품으로 된 물품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관리벳 또는 이고(二股)리벳, 비금속제의 구슬과 스팽글		
8308.10.00	-훅·아이 및 아이릿	5	0
8308.20.00	-관리벳 또는 이고리벳	5	0
8308.90.0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5	0
8309	비(卑)금속제의 전(栓)·캡과 뚜껑(크라운코르크·스크루캡 및 점적구용 전을 포함한다)·병용의 캡슐·나선형의 마개·마개용 커버·실 및 기타 포장용 부속품		
8309.10.00	-크라운코르크	5	0
8309.90.00	-기타	5	0
8310.00.00	비(卑)금속제의 사인판, 명판, 주소판 및 이와 유사한 판, 숫자, 문자 및 기타 표지판(제 94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5	5
8311	비(卑)금속제 또는 금속탄화물제의 선·봉·관·판·용접봉 및 이와 유사한 물품[금속 또는 금속탄화물의 납땜·납접·용접 또는 용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를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분을 응결하여 제조한 금속스프레이용의 선 및 봉		
8311.10.00	-비금속제의 용접봉(봉에 도포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의 것에 한한다)	5	0
8311.20.00	-비금속제의 선(심에 충전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의 것에 한한다)	5	0
8311.30.00	-비(卑)금속제의 도포된 봉과 심이 충전된 선(물로 납땜·납접 또는 용접하는 것에 한한다)	5	0
8311.90.00	-기타	0	0
84	원자로·보일러·기계류, 이들의 부분품		
8401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아니한 원자로용 연료체(카트리지),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계류와 기기		
8401.10.00	-원자로	5	0
8401.20.00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계류와 기기 및 그 부분품	0	0
8401.30.00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연료체(카트리지)	5	0
8401.40.00	-원자로의 부분품	5	0
8402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의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 과열수보일러		
8402.1	-증기발생보일러		
8402.11.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을 초과하는 수관보일러	5	0
8402.12.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 이하인 수관보일러	5	0
8402.19.00	--기타의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 포함한다)	5	0
8402.20.00	-과열수보일러	5	0
8402.90.00	-부분품	5	0
8403	중앙난방용의 보일러(제 8402 호의 것은 제외한다)		
8403.10.00	-보일러	5	0
8403.90.00	-부분품	5	0
8404	제 8402 호 또는 제 8403 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 스팀 또는 기타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8404.10.00	-제 8402 호 또는 제 8403 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	5	0
8404.20.00	-스팀 또는 기타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5	0
8404.90.00	-부분품	5	0
8405	발생로가스 또는 수성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 및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405.10.00	-발생로가스 또는 수성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 및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	0
8405.90.00	-부분품	5	0
8406	증기터빈		
8406.10.00	-선박추진용 터빈	0	0
8406.8	-기타 터빈		
8406.81.00	--출력이 40 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0	0
8406.82.00	--출력이 40 메가와트 이하인 것	0	0
8406.90.00	-부분품	0	0
8407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회전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8407.10.00	-항공기용 엔진	0	0
8407.2	-선박추진용 엔진		
8407.21.00	--아웃보드 모터	0	0
8407.29.00	--기타	0	0
8407.3	-제 87 류의 차량추진용 왕복 피스톤식 엔진		
8407.31.00	--실린더 용량이 50 입방센티미터(시시) 이하인 것	0	0
8407.32.00	--실린더 용량이 50 입방센티미터(시시) 초과 250 입방센티미터(시시) 이하인 것	0	0
8407.33	--실린더 용량이 250 입방센티미터(시시) 초과 1,000 입방센티미터(시시) 이하인 것		
8407.33.10	---승용자동차의 조립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것	5	3
8407.33.90	---기타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407.34	--실린더 용량이 1,000 입방센티미터(시시)를 초과하는 것		
8407.34.10	---승용자동차의 조립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것	5	5
8407.34.20	---제 8701.20.00 호, 제 8702 호, 제 8703 호, 제 8704 호 또는 제 8705 호의 자동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엔진, NSA	5	0
8407.34.90	---기타	0	0
8407.90	-기타의 엔진		
8407.90.10	---승용자동차의 조립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것	5	5
8407.90.20	---제 8701.20.00 호, 제 8702 호, 제 8703 호, 제 8704 호 또는 제 8705 호의 자동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엔진, NSA	0	0
8407.90.30	---동력이 3.6 킬로와트 이하인 엔진, NSA	5	0
8407.90.90	---기타	0	0
8408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엔진 또는 세미디젤엔진)		
8408.10.00	-선박추진용 엔진	0	0
8408.20	-제 87 류의 차량추진용 엔진		
8408.20.10	---승용자동차의 조립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것	5	5
8408.20.20	---제 8701.20.00 호, 제 8702 호, 제 8703 호, 제 8704 호 또는 제 8705 호의 자동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엔진, NSA	5	5
8408.20.90	---기타	0	0
8408.90.00	-기타의 엔진	0	0
8409	부분품(제 8407 호 또는 제 8408 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8409.10.00	-항공기 엔진용의 것	5	0
8409.9	-기타		
8409.91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		
8409.91.10	---다음의 부분품: (가) 카뷰레터 및 이들의 부분품(모터사이클에 사용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나) 피스톤핀, (다) 피스톤링, (라)밸브, (마) 제 8701.20.00 호, 제 8702 호, 제 8703 호, 제 8704 호 또는 제 8705 호의 자동차용 엔진의 것 , (바) 제 8407.31.00 호의 동력이 4.5 킬로와트 이하인 엔진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0
8409.91.90	---기타	0	0
8409.99	--기타		
8409.99.10	---다음의 부분품: (가) 피스톤핀, (나) 피스톤링, (다) 밸브, (라) 제 8701.20.00 호, 제 8702 호, 제 8703 호, 제 8704 호 또는 제 8705 호의 자동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엔진용의 것(이들 자동차의 조립 또는 제조에 사용되지 않는 연료분사장비와 그 부분품을 제외한다)	5	3
8409.99.90	---기타	0	0
8410	수력터빈 · 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8410.1	-수력터빈과 수차		
8410.11.00	--동력이 1,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5	0
8410.12.00	--동력이 1,000 킬로와트 초과, 10,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5	0
8410.13.00	--동력이 10,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5	0
8410.90.00	-부분품(조정기를 포함한다)	5	0
8411	터보제트 · 터보프로펠러와 기타 가스터빈		
8411.1	-터보제트		
8411.11.00	--추진력이 25 킬로뉴턴 이하인 것	0	0
8411.12.00	--추진력이 25 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0	0
8411.2	-터보프로펠러		
8411.21.00	--출력이 1,1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0
8411.22.00	--출력이 1,1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	0
8411.8	-기타 가스터빈		
8411.81.00	--출력이 5,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0
8411.82.00	--출력이 5,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	0
8411.9	-부분품		
8411.91.00	--터보제트 또는 터보프로펠러의 것	0	0
8411.99.00	--기타	0	0
8412	기타 엔진과 모터		
8412.10.00	-반동 엔진(터보제트는 제외한다)	0	0
8412.2	-수력엔진과 수력모터		
8412.21.00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5	0
8412.29.00	--기타	5	0
8412.3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		
8412.31.00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5	0
8412.39	--기타		
8412.39.10	---다음의 물품: (가) 컨트롤밸브의 기계적 작동용 액튜에이터, (나) 외부공급원인 압축가스에 의해 작동되고 최대 가스 소비율이 1 분당 0.07 입방미터 이하인 엔진	5	0
8412.39.90	---기타	0	0
8412.80.00	-기타	0	0
8412.90	-부분품		
8412.90.10	---제 8412.10.00 호, 제 8412.39.90 호 또는제 8412.80.00 호의 엔진용의 것	0	0
8412.90.90	---기타	5	0
8413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액체엘리베이터		
8413.1	-펌프(계기를 갖춘 것 또는 갖추도록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8413.11.00	--연료 또는 윤활유 급유용의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의 것에 한한다)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414.10.00	-진공펌프	5	0
8414.20.00	-손 또는 발작동식의 기체펌프	0	0
8414.30.00	-냉장·냉동설비용의 압축기	5	3
8414.40	-예인용의 바퀴달린 섀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8414.40.10	---왕복식 또는 회전식(1 분당 공급되는 자유공기량이 3 입방미터 이하인 것)	5	0
8414.40.20	---왕복식 또는 회전식(1 분당 공급되는 자유공기량이 3 입방미터 초과 25 입방미터 이하인 것)	5	0
8414.40.90	---기타	0	0
8414.5	-팬		
8414.51.00	--테이블·바닥·벽·창문·천장 또는 지붕용의 팬(출력이 125 와트 이하의 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5	0
8414.59	--기타		
8414.59.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품으로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8414.59.90	---기타	5	0
8414.60.00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 센티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0
8414.80	-기타		
8414.80.1	---왕복식 또는 회전식 공기 압축기 또는 펌프(1 분당 공급되는 자유공기량이 3 입방미터 이하인 것)		
8414.80.11	----수족관 통풍장치	0	0
8414.80.19	----기타	5	0
8414.80.20	---왕복식 또는 회전식 공기 압축기 또는 펌프(1 분당 공급되는 자유공기량이 3 입방미터 초과 25 입방미터 이하인 것)	5	0
8414.80.30	---수동식 전기기계식 공구(전동기가 자장된 것에 한한다), NSA	5	0
8414.80.90	---기타	0	0
8414.90	-부분품		
8414.90.10	---제 8414.20.00 호, 제 8414.40.90 호 또는 제 8414.80.90 호의 물품의 것	0	0
8414.90.20	---제 8414.40.20 호 또는 제 8414.80.20 호의 물품의 것	5	0
8414.90.90	---기타	5	0
8415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8415.10.00	-창형이나 벽형(일체형이나 분리형의 것에 한한다)	5	0
8415.20.00	-자동차용의 것(탑승자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	5	5
8415.8	-기타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413.19.00	--기타	5	0
8413.20.00	-수지식 펌프(제 8413.11.00 호 또는 제 8413.19.00 호의 것은 제외한다)	5	0
8413.30	-연료·윤활유 급유용 또는 냉각 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것에 한한다)		
8413.30.10	---다음의 펌프: (가) 압축 점화식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연료 펌프, (나) 다음의 엔진의 조립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오일 또는 석유 펌프, (1) 제 8701.10.00 호, 제 8701.90.11 호 또는 제 8701.90.19 호의 출력이 7.46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자동차용, (2) 제 8701.30.00 호, 제 8701.90.90 호 또는 제 8709.19.00 호의 자동차용	0	0
8413.30.90	---기타	5	3
8413.40.00	-콘크리트 펌프	5	0
8413.50	-기타의 용적형 왕복펌프		
8413.50.10	---채광 또는 야금 공업용으로 사용하도록 특수 설계제작된 것(선광 기계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펄프 펌프는 제외한다)	5	0
8413.50.90	---기타	5	0
8413.60	-기타 용적형 회전펌프		
8413.60.10	---채광 또는 야금 공업용으로 사용하도록 특수 설계제작된 것(선광 기계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펄프 펌프는 제외한다)	5	0
8413.60.90	---기타	5	0
8413.70	-기타의 원심펌프		
8413.70.10	---채광 또는 야금 공업용으로 사용하도록 특수 설계제작된 것(선광 기계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펄프 펌프는 제외한다)	5	0
8413.70.90	---기타	5	0
8413.8	-기타 펌프, 액체엘리베이터		
8413.81	--펌프		
8413.81.10	---채광 또는 야금 공업용으로 사용하도록 특수 설계제작된 것(선광 기계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펄프 펌프는 제외한다)	5	0
8413.81.90	---기타	5	0
8413.82.00	--액체엘리베이터	5	0
8413.9	-부분품		
8413.91	--펌프의 것		
8413.91.10	---채광 또는 야금 공업용으로 사용하도록 특수 설계제작된 것(선광 기계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펄프 펌프는 제외한다)	5	0
8413.91.20	---제 8413.30.10 호 펌프의 것	0	0
8413.91.90	---기타	5	0
8413.92.00	--액체 엘리베이터의 것	5	0
8414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 또는 기타 가스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415.81.00	--냉각 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5	0
8415.82.00	--기타(냉각 유닛을 결합한 것에 한한다)	5	0
8415.83.00	--냉각 유닛을 결합하지 아니한 것	5	0
8415.90.00	-부분품	5	0
8416	액체연료용·분쇄한 고체연료용 또는 기체연료용의 노용 버너, 기계식 스토커(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배출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8416.10.00	-액체연료용의 노용 버너	5	0
8416.20.00	-기타 노용 버너(콤비네이션 버너를 포함한다)	5	0
8416.30.00	-기계식 스토커(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배출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5	0
8416.90.00	-부분품	5	0
8417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실험실용 노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		
8417.10.00	-배소·용해 또는 기타 열처리용의 노와 오븐(광석·황철광 또는 금속 처리용의 것에 한한다)	5	0
8417.20.00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의 오븐을 포함한다)	5	0
8417.80.00	-기타	5	0
8417.90.00	-부분품	5	0
8418	냉장고·냉동고 및 기타 냉장 또는 냉동기구(전기식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열펌프(제 8415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8418.10.00	-냉장고-냉동고(분리된 외부도어를 갖춘 것에 한한다)	5	0
8418.2	-가정형의 냉장고		
8418.21.00	--압축식	5	0
8418.29.00	--기타	5	0
8418.30.00	-체스트형의 냉동고(용량이 800 리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0
8418.40.00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 리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0
8418.50.00	-냉장 또는 냉동용 장치를 갖춘 저장과 전시목적의 기타 가구(체스트, 캐비닛, 전시용카운터, 쇼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한다)	5	0
8418.6	-기타 냉장 또는 냉동기구, 열펌프		
8418.61.00	--열펌프(제 8415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5	0
8418.69.00	--기타	5	0
8418.9	-부분품		
8418.91.00	--냉장 또는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가구	5	0
8418.99.00	--기타	5	0
8419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 또는 냉각과 같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의 여부를 불문하며(제 8514 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는 제외한다),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		
8419.1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비전기식의 것에 한한다)		
8419.11.00	--가스식의 즉시식 물가열기	5	0
8419.19.00	--기타	5	0
8419.20.00	-내과용·외과용 또는 실험실용의 살균기	5	0
8419.3	-건조기		
8419.31.00	--농산물용의 것	5	0
8419.32.00	--목재·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용의 것	5	0
8419.39	--기타		
8419.39.10	---수동식 전기기계식 공구(전동기가 자장된 것에 한한다)	5	0
8419.39.90	---기타	5	0
8419.40.00	-증류기 또는 정류기	5	0
8419.50	-열교환기		
8419.50.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품으로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8419.50.90	---기타	5	0
8419.60.00	-기체 액화용의 기계류	0	0
8419.8	-기타 기기		
8419.81	--뜨거운 음료제조용 또는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의 것		
8419.81.10	---뜨거운 음료제조용 기계	5	0
8419.81.90	---기타	5	0
8419.89	--기타		
8419.89.20	---수동식 전기기계식 공구(전동기가 자장된 것에 한한다)	5	0
8419.89.90	---기타	5	0
8419.90.00	-부분품	5	0
8420	캘린더기 또는 기타 로울기(금속 또는 유리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이들에 사용되는 실린더		
8420.10.00	-캘린더기 또는 기타 로울기	0	0
8420.9	-부분품		
8420.91.00	--실린더	5	0
8420.99.00	--기타	0	0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		
8421.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8421.11.00	--크림분리기	0	0
8421.12.00	--의류탈수기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421.19.00	--기타	5	0
8421.2	-액체용의 여과기 또는 청정기		
8421.21	--물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8421.21.10	---수영장용 여과기	5	0
8421.21.90	---기타	5	0
8421.22.00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5	0
8421.23.00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	5	3
8421.29.00	--기타	5	0
8421.3	-기체용의 여과기 또는 청정기		
8421.31.00	--내연기관용의 공기여과기	5	3
8421.39.00	--기타	5	0
8421.9	-부분품		
8421.91.00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5	0
8421.99.00	--기타	5	0
8422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류, 병·깡통·상자·자루 또는 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류, 병·단지·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류, 기타 포장기계류(열수축 포장기계류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8422.1	-접시세척기		
8422.11.00	--가정형의 것	5	0
8422.19.00	--기타	5	0
8422.20.00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류	5	0
8422.30	-병·깡통·상자·자루 또는 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류, 병·단지·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류,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8422.30.10	---수동식 전기기계식 공구(전동기가 자장된 것에 한한다)	5	0
8422.30.90	---기타	5	0
8422.40	-기타 포장기계류(열수축 포장기계류를 포함한다)		
8422.40.10	---수동식 전기기계식 공구(전동기가 자장된 것에 한한다)	5	0
8422.40.90	---기타	0	0
8422.90.00	-부분품	5	0
8423	중량측정기기(감량이 50 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의 계수기 또는 검사기를 포함한다), 각종의 저울추		
8423.10.00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 가정형의 저울	5	0
8423.20.00	-컨베이어용의 연속계량식 저울	5	0
8423.30.00	-정량저울과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저울(호퍼스케일을 포함한다)	5	0
8423.8	-기타의 중량측정기기		
8423.81.00	--최대 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 이하인 것	5	0
8423.82.00	--최대 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 초과 5,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5	0
8423.89.00	--기타	5	0
8423.90.00	-각종의 저울 추, 저울 부분품	5	0
8424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 또는 모래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8424.10.0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0
8424.20.00	-스프레이 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5	0
8424.30	-증기 또는 모래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8424.30.10	---수동식 전기기계식 공구(전동기가 자장된 것에 한한다)	5	0
8424.30.90	---기타	5	0
8424.8	-기타 기기		
8424.81.00	--농업용 또는 원예용	5	0
8424.89	--기타		
8424.89.10	---자동차 방풍 유리, 전조등 또는 창문을 세정하기 위한 장치	5	5
8424.89.40	---수동식 전기기계식 공구(전동기가 자장된 것에 한한다)	5	0
8424.89.90	---기타	5	0
8424.90	-부분품		
8424.90.20	---제 8424.30.10 호의 물품의 것	5	0
8424.90.90	---기타	5	5
8425	풀리 태클과 호이스트(스킵호이스트는 제외한다), 윈치와 캡스턴, 잭		
8425.1	-풀리 태클과 호이스트(스킵호이스트 또는 차량을 들어올리는데 사용하는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8425.11.00	--전동식의 것	5	0
8425.19.00	--기타	5	0
8425.3	-윈치, 캡스턴		
8425.31.00	--전동식의 것	5	0
8425.39.00	--기타	5	0
8425.4	-잭, 차량을 들어올리는데 사용하는 호이스트		
8425.41.00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	5	0
8425.42.00	--기타의 잭과 호이스트(액압식의 것에 한한다)	5	0
8425.49.00	--기타	5	0
8426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8426.1	-천장주행 크레인·트랜스포터 크레인·갠트리 크레인·교각형 크레인·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426.11.00	--고정식의 천장주행 크레인	5	0
8426.12.00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	5	0
8426.19.00	--기타	5	0
8426.20.00	-타워크레인	5	0
8426.30.00	-문형 또는 정지형 지브 크레인	5	0
8426.4	-기타 기계류(자주식의 것에 한한다)		
8426.41.00	--타이어가 달린 것	5	0
8426.49.00	--기타	5	0
8426.9	-기타 기계류		
8426.91.00	--도로주행차량에 장착하도록 설계제작된 것	5	0
8426.99.00	--기타	5	0
8427	포크리프트트럭, 기타 작업트럭(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된 것에 한한다)		
8427.10.00	-전동식의 자주식(自走式) 트럭	5	0
8427.20.00	-기타 자주식 트럭	5	0
8427.90.00	-기타 트럭	5	0
8428	기타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		
8428.10.00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	5	0
8428.20.00	-뉴매틱식의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5	0
8428.3	-물품 또는 재료용의 기타 연속작동식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8428.31.00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제작된 것	5	0
8428.32.00	--기타 버켓형의 것	5	0
8428.33.00	--기타 벨트형의 것	5	0
8428.39.00	--기타	5	0
8428.40.00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	5	0
8428.60.00	-텔레페릭·의자 양하기·스키용 드래그라인, 퓨니쿨러용 견인장치	5	0
8428.90.00	-기타 기계류	5	0
8429	자주식의 불도저·앵글도저·그레이더·레벨러·스크레이퍼·메커니컬 셔블·굴착기·셔블로더·탬핑머신 및 로드롤러		
8429.1	-불도저와 앵글도저		
8429.11.00	--무한 궤도식의 것	0	0
8429.19.00	--기타	0	0
8429.20.00	-그레이더와 레벨러	5	0
8429.30.00	-스크레이퍼	5	0
8429.40.00	-탬핑머신 및 로드롤러	5	0
8429.5	-메커니컬 셔블·굴착기와 셔블로더		
8429.51	--프론트엔드 셔블로더		
8429.51.10	---다음의 물품: (가) 무한 궤도식의 것, (나) 탑재량이 16 톤을 초과하는 언더그라운드 로더	0	0
8429.51.90	---기타	5	0
8429.52	--360 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류		
8429.52.10	---다음의 물품: (가) 전기주행식 드래그라인, (나) 작동중량이 12 톤을 초과하는 무한 궤도식 또는 휠 타입 엑스커베이터, (다) 셔블용적이 5 입방미터를 초과하는 메커니컬 셔블	0	0
8429.52.90	---기타	5	0
8429.59	--기타		
8429.59.10	---셔블용적이 5 입방미터를 초과하는 메커니컬 셔블	0	0
8429.59.90	---기타	5	0
8430	기타 이동·정지·지균·스크레이핑·굴착·탬핑·콤팩팅·채굴 또는 천공용의 기계(토양·광석 또는 광물용의 것에 한한다), 항타기와 항발기,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로어		
8430.10.00	-항타기와 항발기	0	0
8430.20.00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로어	0	0
8430.3	-석탄 또는 암석 절단기와 터널 뚫는 기계류		
8430.31.00	--자주식	0	0
8430.39.00	--기타	0	0
8430.4	-기타 천공용 또는 시굴용 기계류		
8430.41.00	--자주식	5	0
8430.49.00	--기타	5	0
8430.50.00	-기타 기계류(자주식의 것에 한한다)	5	0
8430.6	-기타 기계류(자주식이 아닌 것에 한한다)		
8430.61.00	--탬핑용 또는 콤팩팅용의 기계류	5	0
8430.69	--기타		
8430.69.10	---스크레이퍼	5	0
8430.69.90	---기타	0	0
8431	제 8425 호부터 제 8430 호까지의 기계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31.10.00	-제 8425 호의 기계류의 것	5	0
8431.20.00	-제 8427 호의 기계류의 것	5	0
8431.3	-제 8428 호의 기계류의 것		
8431.31.00	--리프트·스킵호이스트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것	5	0
8431.39.00	--기타	5	0
8431.4	-제 8426 호·제 8429 호 또는 제 8430 호의 기계류의 것		
8431.41.00	--버켓·셔블·그랩과 그립	5	0
8431.42.00	--불도저 또는 앵글도저의 블레이드	5	0
8431.43.00	--제 8430.41.00 호 또는 제 8430.49.00 호의 천공 또는 시굴용 기계류의 부분품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434.20.00	-낙농기계	5	0
8434.90.00	-부분품	5	0
8435	포도주·사과술·과즙 또는 이와 유사한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스·크러셔 및 이와 유사한 기계류		
8435.10.00	-기계류	0	0
8435.90.00	-부분품	0	0
8436	기타 농업·원예·임업·가금의 사육용 또는 양봉용 기계류(기계장치 또는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		
8436.10.00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류	5	0
8436.2	-가금의 사육용 기계,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		
8436.21.00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	5	0
8436.29.00	--기타	5	0
8436.80	-기타 기계류		
8436.80.10	---다음의 물품: (가) 벌목기, (나) 벌도조재기	0	0
8436.80.90	---기타	5	0
8436.9	-부분품		
8436.91.00	--가금 사육용 기계류 또는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5	0
8436.99.00	--기타	5	0
8437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 제분업용 기계류 또는 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의 가공 기계류(농장형의 것은 제외한다)		
8437.10.00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	5	0
8437.80.00	-기타의 기계류	0	0
8437.90.00	-부분품	0	0
8438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 또는 제조 산업용 기계류(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의 추출 또는 조제용의 기계류는 제외한다)		
8438.10	-베이커리기계류와 마카로니·스파게티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제조용 기계류		
8438.10.10	---마카로니·스파게티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제조용의 것	0	0
8438.10.90	---기타	5	0
8438.20.00	-과자·코코아 또는 초콜릿 제조용의 기계류	5	0
8438.30.00	-설탕 제조용 기계류	5	0
8438.40.00	-양조용 기계류	5	0
8438.50.00	-육류 또는 가금육의 조제용 기계류	5	0
8438.60.00	-과실·견과 또는 채소의 조제용 기계류	5	0
8438.80.00	-기타 기계류	5	0
8438.90	-부분품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431.49	--기타		
8431.49.10	---제 8430.3 호의 기계류의 것	0	0
8431.49.90	---기타	5	0
8432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류(토양정리 또는 경작용의 것에 한한다), 잔디 또는 운동장용의 롤러		
8432.10.00	-플라우(쟁기)	0	0
8432.2	-하로우(쇄토기)·스카리파이어·컬티베이터(중경기)·제초기와 호우		
8432.21.00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0	0
8432.29.00	--기타	0	0
8432.30.00	-파종기·식부기와 이식기	0	0
8432.40.00	-퇴비 살포기와 비료 살포기	0	0
8432.80.00	-기타 기계류	0	0
8432.90.00	-부분품	0	0
8433	수확기 또는 탈곡기(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베는 기계, 조란·과실 또는 기타 농산물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제 8437 호의 기계류는 제외한다)		
8433.1	-공원 또는 운동장의 잔디깎는 기계		
8433.11.00	--동력식의 것(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5	0
8433.19.00	--기타	5	0
8433.20.00	-기타 풀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의 커터바를 포함한다)	5	0
8433.30.00	-기타 건초제조용 기계류	5	0
8433.40	-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픽업결속기를 포함한다)		
8433.40.10	---등근 베일 건초 곤포기	0	0
8433.40.90	---기타	5	0
8433.5	-기타 수확기, 탈곡기		
8433.51.00	--수확·탈곡 겸용기	0	0
8433.52.00	--기타 탈곡기	5	0
8433.53.00	--구경 또는 과경의 수확기(근채 수확기)	5	0
8433.59	--기타		
8433.59.10	---다음의 물품: (가) 면 채집기계, (나) 덜 익은 옥수수 수확기, (다) 진동수확기	0	0
8433.59.90	---기타	5	0
8433.60.00	-조란·과실 또는 기타 농산물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	5	0
8433.90	-부분품		
8433.90.10	---제 8433.51.00 호 기계의 것	0	0
8433.90.90	---기타	5	0
8434	착유기와 낙농기계		
8434.10.00	-착유기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438.90.10	---제 8438.10 호, 제 8438.20.00 호, 제 8438.30.00 호 또는 제 8438.40.00 호 기계류의 것	5	0
8438.90.90	---기타	5	0
8439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류 또는 지 또는 판지의 제조용 또는 완성가공용 기계류		
8439.10.00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류	0	0
8439.20.00	-지 또는 판지의 제조용 기계류	0	0
8439.30.00	-지 또는 판지의 완성가공용 기계류	5	0
8439.9	-부분품		
8439.91.00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류의 것	0	0
8439.99.00	--기타	5	0
8440	제본용 기계류(제본용 재봉기를 포함한다)		
8440.10.00	-기계류	0	0
8440.90.00	-부분품	0	0
8441	기타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의 가공기계류(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8441.10	-절단기		
8441.10.10	---다음의 기계: (가) 시이터(sheeters)(판 절단용 기계), (나) 슬리터(slitters), (다) 슬리터 권취기	5	0
8441.10.90	---기타	0	0
8441.20.00	-종이백·봉지 또는 봉투 제조용 기계	0	0
8441.30.00	-카톤·박스·케이스·튜브·드럼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0	0
8441.40.00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 제품의 몰딩용 기계	0	0
8441.80	-기타 기계류		
8441.80.10	---권취기	5	0
8441.80.90	---기타	0	0
8441.90	-부분품		
8441.90.10	---제 8441.10.10 호와 제 8441.80.10 호 기계의 것	5	0
8441.90.90	---기타	0	0
8442	플레이트·실린더 또는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의 조제용 또는 제조용 기계류·장치 및 장비(제 8456 호부터 제 8465 호까지의 공작기계는 제외한다),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그레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8442.30.00	-기계류·장치 및 장비	0	0
8442.40.00	-상기한 기계류·장치 또는 장비의 부분품	0	0
8442.50.00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그레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0	0
8443	제 8442 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 인쇄기·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3.1	-제 8442 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8443.11.00	--오프셋 인쇄기계류(릴식의 것에 한한다)	0	0
8443.12.00	--오프셋 인쇄기계류(쉬트식 사무실용의 것으로 접지 않은상태에서 한 변이 22 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 센티미터 이하인 쉬트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0	0
8443.13.00	--기타 오프셋 인쇄기계류	0	0
8443.14.00	--활판인쇄용 기계류(릴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의 것은 제외한다)	0	0
8443.15.00	--활판인쇄용 기계류(릴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의 것은 제외한다)	0	0
8443.16.00	--곡면인쇄용 기계류	0	0
8443.17.00	--그라비아인쇄용 기계류	0	0
8443.19	--기타		
8443.19.10	---핫 스탬핑기	5	0
8443.19.90	---기타	0	0
8443.3	-기타 인쇄기, 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8443.31.00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인쇄, 복사 또는 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0	0
8443.32.00	--기타(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는 것)	0	0
8443.39.00	--기타	0	0
8443.9	-부분품 및 부속품		
8443.91	--제 8442 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3.91.10	---제 8443.19.10 호 기계의 것	5	0
8443.91.90	---기타	0	0
8443.99.00	--기타	0	0
8444.00.00	인조섬유제의 방사·연신·텍스처 또는 절단용의 기계	0	0
8445	방적준비기계, 방적기·합사기 또는 연사기와 기타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위권기를 포함한다)와 제 8446 호 또는 제 8447 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 준비용 기계		
8445.1	-방적준비기계		
8445.11.00	--카드기	0	0
8445.12.00	--코밍기	0	0
8445.13.00	--연조기 또는 조방기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445.19.00	--기타	0	0
8445.20.00	-방적기계	0	0
8445.30.00	-합사기 또는 연사기	0	0
8445.40.00	-권사기(위권기를 포함한다)	0	0
8445.90.00	-기타	0	0
8446	직기(직조기)		
8446.10.00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직물 직조용	0	0
8446.2	-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물 직조용(셔틀형의 것에 한한다)		
8446.21.00	--직조기(동력구동식의 것에 한한다)	0	0
8446.29.00	--기타	0	0
8446.30.00	-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물 직조용(셔틀리스형의 것에 한한다)	0	0
8447	편직기 · 스티치 본딩기와 짐프사 · 튜울 · 레이스 · 자수포 · 트리밍 · 브레이드 또는 망의 제조용 기계 및 터프팅 기계		
8447.1	-원형편기		
8447.11.00	--실린더 지름이 16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8447.12.00	--실린더 지름이 16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8447.20.00	-횡편기, 스티치 본딩기	0	0
8447.90.00	-기타	5	0
8448	제 8444.00.00 호 · 제 8445 호 · 제 8446 호 또는 제 8447 호의 기계의 보조기계류(예: 도비기 · 자카드기 · 자동정지기 · 셔틀교환기), 이 호 또는 제 8444.00.00 호 · 제 8445 호 · 제 8446 호 또는 제 8447 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예: 스핀들 · 스핀들플라이어 · 침포 · 코움 · 방사니플 · 셔틀 · 중광 · 종광프레임 · 메리야스용 바늘)		
8448.1	-제 8444.00.00 호 · 제 8445 호 · 제 8446 호 또는 제 8447 호의 기계의 보조기계류		
8448.11.00	--도비기와 자카드기, 이들과 사용하기 위한 카드의 축소 · 복사 · 천공 또는 조립용 기계	0	0
8448.19.00	--기타	0	0
8448.20.00	-제 8444.00.00 호의 기계 또는 이들의 보조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0	0
8448.3	-제 8445 호의 기계 또는 이들의 보조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31.00	--침포	0	0
8448.32.00	--침포를 제외한 방적준비기계의 것	0	0
8448.33.00	--스핀들 · 스핀들플라이어 · 스피닝링 및 링트래블러	0	0
8448.39.00	--기타	0	0
8448.4	-직기(직조기) 또는 이들의 보조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42.00	--직조기용의 바디 · 종광과 종광 프레임	0	0
8448.49.00	--기타	0	0
8448.5	-제 8447 호의 기계 또는 이들의 보조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51.00	--스티치 형성에 사용하는 싱커 · 바늘과 기타 물품	0	0
8448.59.00	--기타	0	0
8449.00.00	펠트 또는 부직포(원단상 또는 성형의 것)의 제조 또는 완성가공용 기계류(펠트모자 제조용 기계류를 포함한다), 모자 제조용 형	0	0
8450	가정형 또는 세탁소형의 세탁기(세탁 · 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		
8450.1	-1 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		
8450.11.00	--완전자동식 기계	5	0
8450.12.00	--기타 기계(원심탈수기를 내장한 것에 한한다)	5	0
8450.19.00	--기타	5	0
8450.20.00	-기계(1 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	0
8450.90.00	-부분품	5	0
8451	세탁용 · 클리닝용 · 쥐어짜기용 · 건조용 · 다림질용 · 프레스용(퓨징프레스를 포함한다) · 표백용 · 염색용 · 드레싱용 · 완성가공용 · 도포용 또는 침지용의 기계류(제 8450 호의 것은 제외하며, 방직사 · 직물류 또는 방직용 섬유제품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 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 또는 기타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권취기 · 재권취기 · 접음기 · 절단기 또는 핑킹기(방직용 직물용의 것에 한한다)		
8451.10.00	-드라이클리닝기	5	0
8451.2	-건조기		
8451.21.00	--1 회의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	5	0
8451.29.00	--기타	5	0
8451.30.00	-다림질기와 프레스(퓨징프레스를 포함한다)	0	0
8451.40.00	-세척기 · 표백기 또는 염색기	0	0
8451.50.00	-권취기 · 재권취기 · 접음기 · 절단기 또는 핑킹기(방직용 직물용의 것에 한한다)	0	0
8451.80.00	-기타 기계류	5	0
8451.90.00	-부분품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452	재봉기(제 8440 호의 제본용 재봉기는 제외한다), 재봉기용으로 특수 설계제작된 가구 · 밑판 · 덮개, 재봉기용 바늘		
8452.10.00	-가정형의 재봉기	0	0
8452.2	-기타 재봉기		
8452.21.00	--자동식의 유닛	0	0
8452.29.00	--기타	0	0
8452.30.00	-재봉기용 바늘	0	0
8452.90.00	-재봉기용의 가구 · 밑판과 덮개 및 그 부분품, 재봉기의 기타 부분품	0	0
8453	원피나 가죽의 유피준비기 · 유피기 또는 가공기계류 또는 원피나 가죽으로 만든 신발 또는 기타 물품의 제조나 수선용 기계류(재봉기는 제외한다)		
8453.10.00	-원피나 가죽의 유피준비기 · 유피기 또는 가공기계류	0	0
8453.20.00	-신발의 제조 또는 수선용 기계류	0	0
8453.80.00	-기타 기계류	0	0
8453.90.00	-부분품	0	0
8454	전로 · 레이들 · 잉곳용의 주형과 주조기(야금용 또는 금속주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8454.10.00	-전로	5	0
8454.20.00	-잉곳용의 주형과 레이들	5	0
8454.30.00	-주조기	5	0
8454.90.00	-부분품	5	0
8455	금속 압연기와 그 롤		
8455.10.00	-관 압연기	0	0
8455.2	-기타 압연기		
8455.21.00	--열간 또는 열 · 냉간 겸용	0	0
8455.22.00	--냉간 압연기	0	0
8455.30.00	-압연기용의 롤	0	0
8455.90.00	-기타 부분품	0	0
8456	각종 재료의 가공공작기계(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 또는 광자빔 · 초음파 · 방전 · 전기화학 · 전자빔 · 이온빔 또는 플라즈마아크 방식으로 물질을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에 한한다), 워터제트 절단기		
8456.10.00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 또는 광자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0	0
8456.20.00	-초음파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0	0
8456.30.00	-방전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0	0
8456.90	-기타		
8456.90.10	---워터제트 절단기	5	0
8456.90.90	---기타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457	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 ·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의 것에 한한다) 및 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 머신		
8457.10.00	-머시닝센터	0	0
8457.20.00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의 것에 한한다)	0	0
8457.30.00	-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 머신	0	0
8458	금속 절삭가공용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		
8458.1	-수평 선반		
8458.11.00	--수치제어식의 것	0	0
8458.19.00	--기타	0	0
8458.9	-기타의 선반		
8458.91.00	--수치제어식의 것	0	0
8458.99.00	--기타	0	0
8459	금속 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웨이타입 유닛 헤드 머신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 · 보링 · 밀링 · 나선가공 또는 태핑용으로 사용되는 것[제 8458 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8459.10.00	-웨이타입 유닛 헤드머신	0	0
8459.2	-기타 드릴링 머신		
8459.21.00	--수치제어식의 것	0	0
8459.29	--기타		
8459.29.10	---동력작동식	0	0
8459.29.90	---기타	5	0
8459.3	-기타 보링밀링머신		
8459.31.00	--수치제어식의 것	0	0
8459.39.00	--기타	0	0
8459.40.00	-기타 보링머신	0	0
8459.5	-무릎형 밀링머신		
8459.51.00	--수치제어식의 것	0	0
8459.59.00	--기타	0	0
8459.6	-기타 밀링머신		
8459.61.00	--수치제어식의 것	0	0
8459.69.00	--기타	0	0
8459.70.00	-기타 드레딩 또는 태핑머신	0	0
8460	디버링 · 샤프닝 · 그라인딩 · 호닝 · 래핑 · 폴리싱 또는 기타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 · 연마재 · 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메트를 가공하는 것(제 8461 호의 기어절삭기 · 기어연삭기 또는 기어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		
8460.1	-평면 연삭기(축 고정정밀도가 최소 0.01 밀리미터인 것)		
8460.11.00	--수치제어식의 것	0	0
8460.19.00	--기타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460.2	-기타 연삭기(축 고정정밀도가 최소 0.01 밀리미터인 것)		
8460.21.00	--수치제어식의 것	0	0
8460.29.00	--기타	0	0
8460.3	-샤프닝머신(공구 또는 커터를 연삭하는 것에 한한다)		
8460.31.00	--수치제어식의 것	0	0
8460.39	--기타		
8460.39.10	---동력작동식	0	0
8460.39.90	---기타	5	0
8460.40	-호닝머신 또는 래핑머신		
8460.40.10	---동력작동식	0	0
8460.40.90	---기타	5	0
8460.90.00	-기타	0	0
8461	플레이닝용·쉐이핑용·슬로팅용·부로칭용·기어절삭용·기어연삭용 또는 기어완성가공용·톱질용·절단용의 공작기계 및 금속이나 서메트를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기타 공작기계(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461.20.00	-쉐이핑머신 또는 슬로팅머신	0	0
8461.30.00	-부로칭머신	0	0
8461.40.00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 또는 기어완성가공기	0	0
8461.50.00	-톱기계나 절단기	0	0
8461.90.00	-기타	0	0
8462	단조·해머링 또는 다이스탬핑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접음·교정·펼침·전단·펀칭 또는 낫칭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그 외의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 가공용의 프레스		
8462.10	-단조기 또는 다이스탬핑기(프레스를 포함한다)와 해머		
8462.10.10	---동력작동식	0	0
8462.10.90	---기타	5	0
8462.2	-굽힘기·접음기·교정기 또는 펼침기(프레스를 포함한다)		
8462.21.00	--수치제어식의 것	0	0
8462.29	--기타		
8462.29.10	---동력작동식	0	0
8462.29.90	---기타	5	0
8462.3	-전단기(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8462.31.00	--수치제어식의 것	0	0
8462.39	--기타		
8462.39.10	---동력작동식	0	0
8462.39.90	---기타	5	0
8462.4	-펀칭기 또는 낫칭기(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462.41.00	--수치제어식의 것	0	0
8462.49	--기타		
8462.49.10	---동력작동식	0	0
8462.49.90	---기타	5	0
8462.9	-기타		
8462.91.00	--유압식 프레스	0	0
8462.99.00	--기타	0	0
8463	기타 금속이나 서메트의 가공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것에 한한다)		
8463.10.00	-드로우벤치(봉·관·프로파일·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하는 것에 한한다)	0	0
8463.20.00	-나사전조기	0	0
8463.30.00	-선가공기	0	0
8463.90.00	-기타	0	0
8464	석·도자기·콘크리트·석면 시멘트 또는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기계 또는유리의 냉간 가공기계		
8464.10.00	-톱기계	5	0
8464.20.00	-연마기 또는 광택기	5	0
8464.90.00	-기타	5	0
8465	목재·코르크·뼈·경질고무·경질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기계(네일용·스테이플용·접착용 또는 기타 조립용의 기계를 포함한다)		
8465.10.00	-다 작업기계(공구의 교환없이 다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5	0
8465.9	-기타		
8465.91.00	--톱기계	5	0
8465.92.00	--평삭기·밀링기 또는 몰딩기(절단 방식으로 한 것에 한한다)	5	0
8465.93.00	--연삭기·샌딩기 또는 광택기	5	0
8465.94.00	--굽힘기 또는 조립기	0	0
8465.95.00	--드릴링 또는 각끌기계	0	0
8465.96.00	--스플리팅·슬라이싱기 또는 박피기	0	0
8465.99.00	--기타	5	0
8466	제 8456 호부터 제 8465 호까지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가공물홀더 또는 툴홀더·자동개폐식 다이헤드·분할대와 기타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을 포함한다), 각종의 수동식 공구에 사용되는 툴홀더		
8466.10.00	-툴홀더와 자동 개폐식 다이헤드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466.20.00	-가공용 홀더	0	0
8466.30.00	-분할대와 기타의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	0	0
8466.9	-기타		
8466.91.00	--제 8464 호의 기계용의 것	0	0
8466.92.00	--제 8465 호의 기계용의 것	5	0
8466.93	--제 8456 호부터 제 8461 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용의 것		
8466.93.10	---워터제트 절단기용의 것	5	0
8466.93.90	---기타	0	0
8466.94.00	--제 8462 호 또는 제 8463 호의 기계용의 것	0	0
8467	수동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또는 전동기를 자장한 것 또는 비전기식의 모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8467.1	-압축공기식의 것		
8467.11.00	--회전방식의 것(회전 진동자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0	0
8467.19.00	--기타	0	0
8467.2	-전동기를 자장한 것		
8467.21.00	--각종의 드릴	5	0
8467.22.00	--톱	5	0
8467.29.00	--기타	5	0
8467.8	-기타의 공구		
8467.81.00	--체인톱	5	0
8467.89.00	--기타	0	0
8467.9	-부분품		
8467.91.00	--체인톱의 것	5	0
8467.92.00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0	0
8467.99	--기타		
8467.99.10	---제 8467.21.00 호, 제 8467.22.00 호 또는 제 8467.29.00 호의 물품의 것	5	0
8467.99.90	---기타	0	0
8468	납땜용 또는 용접용의 기기(절단가능 여부를 불문하며, 제 8515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표면열처리용의 기기(가스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에 한한다)		
8468.10.00	-수지식 취관	0	0
8468.20	-가스를 사용하는 기타 기기		
8468.20.10	---금속가공용의 것(컴퓨터제어기가 결합된 것)	0	0
8468.20.90	---기타	5	0
8468.80.00	-기타의 기기	5	0
8468.90.00	-부분품	5	0
8469.00.00	타자기(제 8443 호의 프린터기는 제외한다), 워드프로세싱머신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470	계산기와 계산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데이터 녹음·재생 및 표시기, 회계기·우편요금계기·표권발행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기구를 갖춘 것에 한한다), 금전등록기		
8470.10.00	-전자계산기(외부의 전원없이 작동되는 것에 한한다)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데이터 녹음, 재생 및 표시기	0	0
8470.2	-기타 전자계산기		
8470.21.00	--인쇄 장치를 갖춘 것	0	0
8470.29.00	--기타	0	0
8470.30.00	-기타 계산기	0	0
8470.50.00	-금전 등록기	0	0
8470.90.00	-기타	0	0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471.30.0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0	0
8471.4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1.00	--적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장치 및 입출력 장치를 내장한 것(이들의 상호결합여부를 불문한다)	0	0
8471.49.00	--기타(시스템의 형태로 제시된 것에 한한다)	0	0
8471.50.00	-처리장치(제 8471.41.00 호와 제 8471.49.00 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8471.60.00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동일하우징 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8471.70.00	-기억장치	0	0
8471.80.00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0	0
8471.90.00	-기타	0	0
8472	기타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 또는 스텐실 등사기·주소인쇄기·현금자동지불기·주화분류기·주화계수 또는 포장기·연필절삭기·천공기 또는 스테이플기)		
8472.10.00	-등사기	0	0
8472.30.00	-우편물의 분류기 또는 접음기 또는 우편물을 봉투나 밴드에 삽입하는 기계와 우편물의 개봉·봉함 또는 실링기 및 우표의 첨부 또는 소인기	0	0
8472.90	-기타		
8472.90.10	---스테이플기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472.90.90	---기타	0	0
8473	제 8469 호부터 제 8472 호까지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 · 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8473.10.00	-제 8469 호의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0	0
8473.2	-제 8470 호의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73.21.00	--제 8470.10.00 호 · 제 8470.21.00 호 또는 제 8470.29.00 호의 전자 계산기의 것	0	0
8473.29.00	--기타	0	0
8473.30.00	-제 8471 호의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0	0
8473.40.00	-제 8472 호의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0	0
8473.50.00	-제 8469 호부터 제 8472 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 중에서 두 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부분품과 부속품	0	0
8474	선별기 · 기계식 체 · 분리기 · 세척기 · 파쇄기 · 분쇄기 · 혼합기 또는 반죽기(고상 · 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 · 석 · 광석 또는 기타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 조괴기 · 형입기 · 성형기(고체의 광물성 연료 · 세라믹 페이스트 · 굳지 아니한 시멘트 · 석고 또는 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기타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에 한한다), 주물용 사형(砂型)의 성형기		
8474.10.00	-선별기 · 기계식 체 · 분리기 또는 세척기	5	0
8474.20.00	-파쇄기 또는 분쇄기	5	0
8474.3	-혼합기 또는 반죽기		
8474.31.00	--콘크리트 혼합기 또는 모르타르 혼합기	5	0
8474.32.00	--역청질과 광물성재료의 혼합기	5	0
8474.39.00	--기타	5	0
8474.80.00	-기타 기계류	5	0
8474.90.00	-부분품	5	0
8475	전기 또는 전자램프 · 튜브 또는 밸브 또는 플래시벌브(외피가 유리제인 것에 한한다)의 조립기계, 유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또는 열간가공용의 기계		
8475.10.00	-전기 또는 전자램프 · 튜브 또는 밸브 또는 플래시벌브(외피가 유리제인 것에 한한다)의 조립기계	0	0
8475.2	-유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또는 열간가공용의 기계		
8475.21.00	--광섬유 및 광섬유 예비 성형품 제조용의 기계	0	0
8475.29.00	--기타	5	0
8475.90.00	-부분품	5	0
8476	물품의 자동판매기(예: 우표 · 담배 · 식품 또는 음료의 자동판매기)(화폐교환기를 포함한다)		
8476.2	-음료 자동판매기		
8476.21.00	--가열장치 또는 냉장장치를 갖춘 것	5	0
8476.29.00	--기타	5	0
8476.8	-기타 기계		
8476.81.00	--가열장치 또는 냉장장치를 갖춘 것	5	0
8476.89.00	--기타	5	0
8476.90.00	-부분품	5	0
8477	고무 또는 플라스틱의 가공용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용도의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477.10.00	-사출 성형기	5	0
8477.20.00	-압출기	5	0
8477.30.00	-취입 성형기	5	0
8477.40.00	-진공성형기 및 기타 열성형기	5	0
8477.5	-기타 성형기		
8477.51.00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 또는 재생기 또는 기타 이너튜브 성형기	5	0
8477.59.00	--기타	5	0
8477.80.00	-기타 기계류	5	0
8477.90.00	-부분품	5	0
8478	담배의 조제 또는 제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478.10.00	-기계류	0	0
8478.90.00	-부분품	0	0
8479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기(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8479.10.00	-토목공사 · 건축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	5	0
8479.20.00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의 추출 또는 조제용 기계류	0	0
8479.30.00	-파티클보드 또는 건축용의 섬유판(목재 또는 기타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에 한한다)의 제조용 프레스와 목재 또는 코르크 처리용의 기타 기계	0	0
8479.40.00	-로프 또는 케이블 제조기	0	0
8479.50	-산업용 로보트(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479.50.10	---금속 처리용의 것	0	0
8479.50.20	--- 혼합기 · 반죽기 · 파쇄기 · 분쇄기 · 기계식체 · 시프팅기 · 균질기 · 유화기 또는 교반기의 것	5	0
8479.50.90	---기타	5	0
8479.60.00	-증발식 에어쿨러	5	0
8479.7	-탑승교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479.71.00	--공항에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0
8479.79.00	--기타	5	0
8479.8	-기타 기기		
8479.81.00	--금속 처리용(전선권선기를 포함한다)	0	0
8479.82.00	--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체·시프팅기·균질기·유화기 또는 교반기	5	0
8479.89	--기타		
8479.89.10	---가스작동식의 금속절단용 기계류와 장치(컴퓨터 제어기가 결합된 것)	0	0
8479.89.90	---기타	5	0
8479.90.00	-부분품	5	0
8480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금속(잉곳용의 것은 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물질·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8480.10.00	-금속주조용의 주형틀	5	0
8480.20.00	-주형 베이스	5	0
8480.30.00	-주형 제조용의 모형	5	0
8480.4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 성형용의 주형		
8480.41.00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5	0
8480.49.00	--기타	5	0
8480.50.00	-유리 성형용의 주형	5	0
8480.60.00	-광물성물질 성형용의 주형	5	0
8480.7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8480.71.00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5	0
8480.79.00	--기타	5	0
8481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		
8481.10.00	-감압밸브	5	5
8481.20.00	-유압 전송용 또는 공기압 전송용의 밸브	5	5
8481.30.00	-체크(논리턴)밸브	5	3
8481.40.00	-안전밸브	5	5
8481.80	-기타의 기기		
8481.80.10	---농업기구작동을 위한 것으로서 농업용 트랙터에 사용되기 위해 특수 설계제작된 유압제어밸브	0	0
8481.80.90	---기타	5	0
8481.90	-부분품		
8481.90.10	---제 8481.80.10 호의 기기용의 것	0	0
8481.90.90	---기타	5	0
8482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		
8482.10	-볼베어링		
8482.10.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8482.10.90	---기타	5	0
8482.20	-원추형 롤러베어링(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을 포함한다)		
8482.20.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8482.20.90	---기타	5	0
8482.30.00	-구형 롤러베어링	5	0
8482.40	-니들 롤러베어링		
8482.40.1	---제 8701.20.00 호, 제 8702 호, 제 8703 호, 제 8704 호 또는 제 8705 호의 자동차에 사용되는 프로펠러 샤프트 유니버셜 조인트용의 것		
8482.40.11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8482.40.19	----기타	5	0
8482.40.90	---기타	5	0
8482.50.00	-기타 원통형 롤러베어링	5	0
8482.80.00	-기타(볼/롤러베어링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5	0
8482.9	-부분품		
8482.91	--볼·니들 및 롤러		
8482.91.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8482.91.90	---기타	5	0
8482.99	--기타		
8482.99.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8482.99.90	---기타	5	0
8483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및 기타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		
8483.10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8483.10.10	---아웃보드 모터의 것	0	0
8483.10.9	---기타		
8483.10.91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3
8483.10.99	----기타	5	0
8483.20.00	-베어링하우징(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을 갖춘 것에 한한다)	5	5
8483.30	-베어링하우징(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을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플레인샤프트베어링		
8483.30.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8483.30.90	---기타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483.40	-기어와 기어링(날이 붙은 휠·체인스프로켓과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 전동용 엘리먼트는 제외한다),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와 기타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8483.40.1	---제 8701.20.00 호, 제 8702 호, 제 8703 호, 제 8704 호 또는 제 8705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에 사용되는 것[압축점화식엔진(디젤 또는 세미디젤 엔진)용의 연료분사 장치용의 것은 제외한다]		
8483.40.11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3
8483.40.19	----기타	5	0
8483.40.90	---기타	5	3
8483.50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8483.50.1	---제 8701.20.00 호, 제 8702 호, 제 8703 호, 제 8704 호 또는 제 8705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에 사용되는 것[압축점화식엔진(디젤 또는 세미디젤 엔진)용의 연료분사 장치용의 것은 제외한다]		
8483.50.11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8483.50.19	----기타	5	0
8483.50.90	---기타	5	5
8483.60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		
8483.60.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8483.60.90	---기타	5	0
8483.90.00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 및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 전동용 엘리먼트, 부분품	5	5
8484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기타 재료와 혼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에 한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 또는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에 한한다), 메커니컬 실		
8484.10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기타 재료와 혼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에 한한다)		
8484.10.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3
8484.10.90	---기타	5	0
8484.20.00	-메커니컬 실	5	0
8484.90	-기타		
8484.90.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8484.90.90	---기타	5	0
8486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 9 호다목에 명시된 기계와 기기, 부분품과 부속품		
8486.10	-보울 또는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기기		
8486.10.10	---다음의 기계와 기기: (가) 단결정 반도체 보울(boule)의 성장 또는 풀링용의 것, (나)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재료를 가공하는 공구[제 8456 호(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 또는 광자빔·이온빔 또는 전자빔의 방식을 포함한다)에서 규정한 방식에 의한 것에 한한다], (다) 반도체 웨이퍼 공정용 스핀 드라이어, (라) 단결정 반도체 보울의 절단용 톱 기계, (마) 연마기·광택기 또는 래핑기, (바) 공업용 또는 실험실용의 전기식 노 또는 오븐	0	0
8486.10.20	---제 8543.70.00 호로 분류되는 기계와 기기(이 류의 주 제 9 호 라목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다), NSA	0	0
8486.10.30	---온도변화에 따른 방식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와 기기, NSA	5	0
8486.10.90	---기타	5	0
8486.20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8486.20.10	---다음의 기계와 기기: (가) 반도체 웨이퍼의 습식 식각·현상·스트리핑 또는 세척용 기기(분사기를 포함한다), (나) 반도체 웨이퍼의 물리적 방식의 증착기(스퍼터링 방식의 증착기를 포함한다), (다) 화학적 기상증착기, (라)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재료를 가공하는 공구[제 8456 호(레이저나 기타 광선 또는 광자빔·이온빔 또는 전자빔 방식을 포함한다)에서 규정한 특정한 방식에 의한 것에 한한다], (마) 에피택시얼 증착기, (바) 산업용 또는 실험실용의 전기식 노 또는 오븐, (사) 반도체 웨이퍼 위에 사진용 감광유제를 도포하는 스피너, (아) 반도체재료 건식 식각 패턴용의 것, (자)반도체 재료의 도핑용 이온주입기, (차) 감광처리된 반도체 재료에 회로 패턴을 투영 또는 드로잉하는 기기, (카) 반도체 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절단하는 톱 기계, (타) 반도체 웨이퍼의 스크라이빙(scribing) 또는 스코어링(scoring)용 다이싱기	0	0
8486.20.20	---제 8543.70.00 호에 분류된 기기(이 류의 주 제 9 호 라목에 기재된 것은 제외한다), NSA	0	0
8486.20.30	---제 8477 호에 분류된 기기(이 류의 주 제 9 호 라목에 기재된 것은 제외한다), NSA	5	0
8486.20.90	---기타	5	0
8486.3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486.30.10	---다음의 물품 (가) 평판디스플레이의 습식 식각·현상·스트리핑 또는 세척용 기기, (나) 회로패턴을 투영, 드로잉 또는 표면 도금하는 기기(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다)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재료를 가공하는 공작기계[제 8456 호(레이저나 기타 광선 또는 광자빔·이온빔 또는 전자빔 방식을 포함한다)에서 규정한 방식에 의한 것에 한한다], (라) 사진용 감광유제를 도포하는 스피너	0	0
8486.30.20	---제 8543.70.00 호에 분류된 기기(이 류의 주 제 9 호 라목에 기재된 것은 제외한다), NSA	0	0
8486.30.30	---액체 분사용, 살포용 또는 분무용 기기(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에 한한다), NSA	5	0
8486.30.90	---기타	5	0
8486.40	-이 류의 주 제 9 호다목에서 규정한 기계와 기기		
8486.40.10	---다음의 기기 (가)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재료를 가공하는 공구[제 8456 호(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 또는 광자빔, 이온빔 또는 전자빔 방식을 포함한다)에서 규정한 방식에 의한 것에 한한다], (나) 광학현미경 및 기타 현미경, (다) 제도용 또는 도면설계용 기구, (라) 반도체 조립용의 다이 부착기, 테이프자동접착기 · 와이어접착기 (마)반도체조립용 인캡슐레이션 기기, (바) 반도체 리드의 굽힘, 접음 또는 펼침용 기기, (사) 금속가공용의 납땜용 또는 용접용 기기(제 8515 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아) 산업용 로보트(반도체 웨이퍼, 웨이퍼카셋트 또는 웨이퍼박스를 이송, 핸들링 및 저장하기 위한 자동 기계), (자) 플라스틱 또는 고무 성형용의 사출식 또는 압출식 주형(반도체 제조용에 한한다)	0	0
8486.40.20	---제 8543.70.00 호에 분류된 기기(이 류의 주 제 9 호 라목에 기재된 것은 제외한다), NSA	0	0
8486.40.30	---제 8477 호 또는 제 8480.71.00 호에 분류된 기기(이 류의 주 제 9 호 라목에 기재된 것은 제외한다), NSA	5	0
8486.40.40	---전기도금공정에 앞서 반도체패키지의 금속리드의 세척 및 오염물질제거용 디플래쉬 기계	0	0
8486.40.90	---기타(보울·웨이퍼·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 기계류를 포함한다)	5	0
8486.90	-부분품 및 부속품		
8486.90.10	---제 8486.10.10 호, 제 8486.20.10 호, 제 8486.30.10 호 및 제 8486.40.10 호의 물품의 것(제 8486.90.4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8486.90.20	---제 8486.10.20 호, 제 8486.20.20 호, 제 8486.30.20 호 및 제 8486.40.20 호의 물품의 것	5	0
8486.90.30	---제 8486.20.30 호 및 제 8486.40.30 호의 물품의 것	5	0
8486.90.40	---제 8515 호에 열거된 종류의 납붙임용, 땜질용 또는 용접용기계의 것	5	0
8486.90.50	---제 8464 호에 열거된 종류의 공작기계의 것, NSA	0	0
8486.90.60	---제 8486.30.30 호 또는 제 8486.40.40 호의 물품의 것	5	0
8486.90.70	---제 8466.10.00 호, 제 8466.20.00 호 또는 8466.30.00 호에 분류되는 것(이 류의 주 제 9 호 라목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다)	0	0
8486.90.90	---기타	5	0
8487	기계류의 부분품(전기접속자 · 절연체 · 코일 · 접촉자 또는 기타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487.10.00	-선박 또는 보트의 추진기와 이들의 블레이드	5	0
8487.90.00	-기타	5	0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8501.10.00	-전동기(출력이 37.5 와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5
8501.20.00	-교류 · 직류 겸용 전동기(출력이 37.5 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	0
8501.3	-기타 직류 전동기, 직류발전기		
8501.31.00	--출력이 750 와트 이하인 것	5	0
8501.32.00	--출력이 750 와트 초과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5	0
8501.33.00	--출력이 75 킬로와트 초과 3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5	0
8501.34.00	--출력이 37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5	0
8501.40.00	-기타 단상의 교류전동기	5	0
8501.5	-기타 다상의 교류전동기		
8501.51.00	--출력이 750 와트 이하인 것	5	0
8501.52.00	--출력이 750 와트 초과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5	0
8501.53.00	--출력이 7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5	0
8501.6	-교류발전기		
8501.61.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0
8501.62.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0
8501.63.00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8501.64.00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0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502.1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디젤 또는 세미디젤엔진에 한한다)		
8502.11.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0
8502.12.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0
8502.13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502.13.10	---출력이 5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교류발전세트	0	0
8502.13.90	---기타	5	0
8502.20.00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5	0
8502.3	-기타 발전세트		
8502.31	--풍력의 것		
8502.31.10	---출력이 5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교류발전세트	0	0
8502.31.90	---기타	5	0
8502.39	--기타		
8502.39.10	---출력이 5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교류발전세트	0	0
8502.39.90	---기타	5	0
8502.40.00	-전기회전변환기	5	0
8503.00.00	부분품(제 8501 호 또는 제 8502 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5	5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8504.10.00	-방전등 또는 방전관용의 안정기	5	0
8504.2	-유입식의 변압기		
8504.21.00	--용량이 6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0
8504.22.00	--용량이 65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0
8504.23.00	--용량이 10,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5	0
8504.3	-기타 변압기		
8504.31.00	--용량이 1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0
8504.32.00	--용량이 1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6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0
8504.33.00	--용량이 16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0
8504.34.00	--용량이 5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5	0
8504.40	-정지형 변환기		
8504.40.30	---다음의 물품: (가) 분리된 하우징 유닛(동일 캐비닛 안에 제 8471 호의 중앙처리장치가 내장되도록 설계제작된 것), (나) 제 8517 호의 전기통신기기용의 것	0	0
8504.40.90	---기타	5	0
8504.50	-기타 유도자		
8504.50.10	---다음의 물품: (가) 제 8471 호의 장치용으로 설계제작된 것, (나) 8517 호의 전기통신기기용의 것	0	0
8504.50.90	---기타	5	0
8504.90	-부분품		
8504.90.30	---제 8504.40.30 호의 물품의 것	0	0
8504.90.90	---기타	5	0
8505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홀더, 전자석커플링·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		
8505.1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8505.11.00	--금속제의 것	5	0
8505.19.00	--기타	5	0
8505.20.00	-전자석 커플링·클러치와 브레이크	0	0
8505.90.0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0	0
8506	일차전지와 일차배터리		
8506.10.00	-이산화망간	0	0
8506.30.00	-산화수은	0	0
8506.40.00	-산화은	0	0
8506.50.00	-리튬	0	0
8506.60.00	-에어징크	0	0
8506.80.00	-기타 일차전지와 일차배터리	5	0
8506.90.00	-부분품	0	0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507.1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의 연산(鉛酸) 축전지		
8507.10.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8507.10.90	---기타	5	5
8507.20.00	-기타 연산 축전지	5	5
8507.30.00	-니켈-카드뮴	5	0
8507.40.00	-니켈-철	5	0
8507.50.00	-니켈-수소 합금	5	0
8507.60.00	-리튬-이온	5	0
8507.80.00	-기타 축전지	5	0
8507.90	-부분품		
8507.90.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것	5	5
8507.90.90	---기타	5	0
8508	진공청소기		
8508.1	-전동기를 자장한 것		
8508.11.00	--출력이 1,500 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기타 20 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5	0
8508.19.00	--기타	5	0
8508.60.00	-기타 진공청소기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508.70.00	-부분품	5	0
8509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하며, 제 8508 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		
8509.40.0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 또는 채소즙 추출기	0	0
8509.80	-기타 기기		
8509.80.10	---바닥광택기	5	0
8509.80.90	---기타	0	0
8509.90.00	-부분품	5	0
8510	면도기 · 이발기 및 모발제거기[전동기를 자장(自藏)한 것에 한한다]		
8510.10.00	-면도기	0	0
8510.20.00	-이발기	0	0
8510.30.00	-모발제거기	0	0
8510.90.00	-부분품	0	0
8511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 또는 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 · 자석발전기 · 점화코일 · 점화플러그 및 예열플러그 · 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 · 교류발전기)와 개폐기		
8511.10.00	-점화플러그	5	3
8511.20.00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자석발전기, 마그네틱 플라이휠	5	0
8511.30.00	-배전기, 점화코일	5	3
8511.40	-시동전동기와 겸용의 시동발전기		
8511.40.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3
8511.40.90	---기타	5	0
8511.50	-기타 발전기		
8511.50.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3
8511.50.90	---기타	5	0
8511.80.00	-기타 기기	5	3
8511.90.00	-부분품	5	3
8512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 8539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윈드스크린와이퍼 · 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		
8512.10.00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 또는 시각 신호용 기구	0	0
8512.20.00	-기타 조명용 또는 시각신호용기구	5	3
8512.30.00	-음향신호용 기구	5	3
8512.40.00	-윈드스크린와이퍼 · 제상기와 제무기	5	3
8512.90	-부분품		
8512.90.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3
8512.90.90	---기타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513	휴대용 전등(건전지 · 축전지 · 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에 한하며, 제 8512 호의 조명기기는 제외한다)		
8513.10.00	-전등	5	0
8513.90.00	-부분품	0	0
8514	공업용 또는 실험실용의 전기식 노와 오븐(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손실식의 것을 포함한다), 기타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손실식 가열기		
8514.10.00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	5	0
8514.20.00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손실식의 노와 오븐	5	0
8514.30.00	-기타의 노와 오븐	5	0
8514.40.00	-기타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손실식 가열기	5	0
8514.90.00	-부분품	5	0
8515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식 또는 광자빔식, 초음파식, 전자빔식, 자기펄스식 또는 플라즈마아크식의 납땜 또는 용접용의 기기(절단기능을 가진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금속 또는 서메트의 가열분사용의 전기식 기기		
8515.1	-납땜용의 기기		
8515.11.00	--납땜용의 인두와 건	5	0
8515.19	--기타		
8515.19.10	---전기식 또는 레이저식 금속 가공용 납땜용기기(컴퓨터 제어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0	0
8515.19.90	---기타	5	0
8515.2	-금속의 저항용접용 기기		
8515.21	--전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의 것		
8515.21.10	---전기식 또는 레이저식(컴퓨터 제어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0	0
8515.21.90	---기타	5	0
8515.29.00	--기타	5	0
8515.3	-금속의 아크(플라즈마아크를 포함한다) 용접기기		
8515.31	--전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의 것		
8515.31.10	---전기식 또는 레이저식(컴퓨터 제어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0	0
8515.31.90	---기타	5	0
8515.39.00	--기타	5	0
8515.80	-기타 기기		
8515.80.10	---전기식 또는 레이저식 금속 가공용 용접용기기(컴퓨터 제어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0	0
8515.80.90	---기타	5	0
8515.90.00	-부분품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516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전기난방기기와 전기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컬링통히터) 및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기타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 8545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16.10.00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가열기	5	0
8516.2	-전기난방기기와 전기토양가열기		
8516.21.00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5	0
8516.29.00	--기타	5	3
8516.3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 또는 손건조기		
8516.31.00	--헤어드라이어	5	0
8516.32.00	--기타 이용기기	0	0
8516.33.00	--손 건조기	5	0
8516.40.00	-전기다리미	5	0
8516.50.0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0	0
8516.60.00	-기타 오븐, 쿠커·조리판·보일링링·그릴러와 로스터	5	0
8516.7	-기타 전열기기		
8516.71.00	--커피 또는 차 끓이는 기기	0	0
8516.72.00	--토스터	5	0
8516.79.00	--기타	5	0
8516.80.00	-전열용 저항체	5	0
8516.90.00	-부분품	5	0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타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 8443 호, 제 8525 호, 제 8527 호 또는 제 8528 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는 제외한다)		
8517.1	-전화기 세트(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8517.11.00	--유선전화기 세트(코드리스 핸드세트가 있는 것에 한한다)	0	0
8517.12.00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0	0
8517.18.00	--기타	0	0
8517.6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타 기기(근거리통신망 또는 원거리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8517.61.00	--기지국	0	0
8517.62.00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기(교환기 및 라우팅기기를 포함한다)	0	0
8517.69	--기타		
8517.69.10	---무선전화용 또는 무선전신용 수신기기(호출, 경보 또는 페이징용의 휴대용 수신기는 제외한다)	5	0
8517.69.90	---기타	0	0
8517.70	-부분품		
8517.70.10	---제 8517.69.10 호의 물품의 것	5	0
8517.70.90	---기타	0	0
8518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전기 가청주파증폭기, 전기 음향증폭세트		
8518.10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8518.10.10	---다음의 물품: (가) 전기통신용 마이크로폰(지름이 10 밀리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3 밀리미터 이하이며, 주파수 대역이 300 헤르츠부터 3.4 킬로 헤르츠까지인 것에 한한다), (나) 무선전송장치가 결합된 무선 마이크로폰	0	0
8518.10.90	---기타	5	0
8518.2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518.21.00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에 한한다)	5	0
8518.22.00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에 한한다)	5	0
8518.29	--기타		
8518.29.10	---전기통신용의 것(지름이 50 밀리미터 이하이고, 주파수대역이 300 헤르츠부터 3.4 킬로헤르츠까지이며, 하우징이 없는 것에 한한다)	0	0
8518.29.90	---기타	5	0
8518.30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8518.30.10	---다음의 물품: (가) 유선전화 헤드세트, (나) 무선전송장치가 결합된 기타 헤드세트, (다) 무선전송장치를 갖추거나 결합된 유선전화 핸드세트	0	0
8518.30.90	---기타	5	0
8518.40	-전기 가청주파증폭기		
8518.40.10	---유선전화 중계기용의 것	0	0
8518.40.90	---기타	5	0
8518.50.00	-전기 음향증폭세트	5	0
8518.90.00	-부분품	0	0
8519	음성 녹음 또는 재생 기기		
8519.20	-동전·지폐·은행카드·토큰 또는 기타 지급 수단으로 작동하는 기기		
8519.20.10	---코인 또는 디스크 작동식 레코드 플레이어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519.20.90	---기타	5	0
8519.30.00	-턴 테이블(레코드 데크)	0	0
8519.50.00	-전화응답기	0	0
8519.8	-기타 기기		
8519.81	--자기식·광학식 또는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8519.81.10	---트랜스크라이빙 머신	0	0
8519.81.20	---기타 음성재생기(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3
8519.81.30	---구술녹음기: (가) 외부전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 또는 (나) 디지털 오디오형 또는 카세트형 마그네틱 테이프 녹음기	0	0
8519.81.4	---기타 마그네틱 테이프 녹음기(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에 한한다)		
8519.81.41	----카세트형	5	0
8519.81.49	----기타	0	0
8519.81.90	---기타 음성기록기(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0
8519.89	--기타		
8519.89.10	---트랜스크라이빙 머신	0	0
8519.89.20	---레코드 플레이어	0	0
8519.89.30	---기타 음성재생기(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3
8519.89.90	---기타	5	0
8521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521.10.00	-마그네틱 테이프형의 것	0	0
8521.90.00	-기타	0	0
8522	제 8519 호 또는 제 8521 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8522.10.00	-픽업 카트리지	0	0
8522.90.00	-기타	0	0
8523	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 여부를 불문하고, 디스크의 제조용의 매트릭과 마스터를 포함하되, 제 37 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8523.2	-자기식 매체		
8523.21.00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자장한 카드	5	0
8523.29.00	--기타	0	0
8523.4	-광학식 매체		
8523.41.00	--기록이 안된 것	0	0
8523.49.00	--기타	0	0
8523.5	-반도체 매체		
8523.51.00	--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0	0
8523.52.00	--"스마트카드"	0	0
8523.59.00	--기타	0	0
8523.80.00	-기타	0	0
8525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8525.50.00	-송신기기	5	0
8525.60.00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0	0
8525.80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8525.80.10	---다음의 물품: (가) 디지털 카메라, (나) 웹 카메라	0	0
8525.80.90	---기타	5	0
8526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		
8526.10.00	-레이더기기	5	0
8526.9	-기타		
8526.91.00	--항행용 무선기기	5	0
8526.92.00	--무선원격조절기기	5	0
8527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 또는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내에 결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527.1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외부전원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8527.12.00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0	0
8527.13.00	--기타 기기(음성기록기 또는 음성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에 한한다)	0	0
8527.19.00	--기타	5	0
8527.2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자동차용으로서 외부전원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		
8527.21.00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5	0
8527.29.00	--기타	5	3
8527.9	-기타		
8527.91.00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5	0
8527.92.00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0	0
8527.99.00	--기타	5	0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또는 음성 또는 영상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528.4	-음극선관 모니터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528.41.00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0	0
8528.49.00	--기타	0	0
8528.5	-기타 모니터		
8528.51.00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0	0
8528.59.00	--기타	0	0
8528.6	-프로젝터		
8528.61.00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0	0
8528.69.00	--기타	0	0
8528.7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또는 음성기록 또는 영상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528.71	--영상디스플레이 또는 스크린을 갖추도록 설계제작되지 아니한 것		
8528.71.10	---천연색의 것	5	0
8528.71.20	---흑백 또는 기타 단색의 것	0	0
8528.72.00	--기타(천연색의 것에 한한다)	5	0
8528.73.00	--기타(단색의 것에 한한다)	0	0
8529	부분품(제 8525 호부터 제 8528 호까지에 열거된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8529.10	-각종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와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한 부분품		
8529.10.20	---제 8525.60.00 호 또는 제 8525.80.10 호의 물품용의 것	0	0
8529.10.30	---제 8525 호 NSA 또는 제 8526 호의 물품용의 것	5	0
8529.10.90	---기타	5	0
8529.90	-기타		
8529.90.20	---제 8525.60.00 호 또는 제 8525.80.10 호의 물품용의 것	0	0
8529.90.30	---제 8525 호 NSA 또는 제 8526 호의 물품용의 것	5	0
8529.90.40	---제 8528.41.00 호, 제 8528.51.00 호 또는 제 8528.61.00 호의 물품용의 것	0	0
8529.90.90	---기타	5	0
8530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 또는 공항용의 전기식 신호·안전 또는 교통관제기기(제 8608.00.00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0.10.00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기	5	0
8530.80.00	-기타 기기	0	0
8530.90.00	-부분품	5	0
8531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제 8512 호 또는 제 8530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1.10	-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8531.10.10	---도난경보기	0	0
8531.10.9	---기타		
8531.10.91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8531.10.99	----기타	5	0
8531.20.00	-액정표시단자(LCD) 또는 발광다이오드단자(LED)가 결합된 표시반	0	0
8531.80.00	-기타 기기	0	0
8531.90	-부분품		
8531.90.10	---제 8531.20.00 호 또는 제 8531.80.00 호의 물품용의 것	0	0
8531.90.90	---기타	5	0
8532	축전기[고정식·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세트)에 한한다]		
8532.10.00	-고정식 축전기로 50/60 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무효전력 용량이 0.5 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0	0
8532.2	-기타 고정식 축전기		
8532.21.00	--탄탈륨	0	0
8532.22.00	--알루미늄 전해	0	0
8532.23.00	--세라믹 유전체(단층)	0	0
8532.24.00	--세라믹 유전체(다층)	0	0
8532.25.00	--종이 또는 플라스틱 유전체	0	0
8532.29.00	--기타	0	0
8532.30.00	-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세트) 축전기	0	0
8532.90.00	-부분품	0	0
8533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		
8533.10.00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콤퍼지션형 또는 필름형의 것에 한한다)	0	0
8533.2	-기타 고정식 저항기		
8533.21.00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0	0
8533.29.00	--기타	0	0
8533.3	-권선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한다)		
8533.31.00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0	0
8533.39.00	--기타	0	0
8533.40.00	-기타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한다)	0	0
8533.90.00	-부분품	0	0
8534.00.00	인쇄회로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535	전기회로의 개폐용 또는 보호용 또는 접속용 전기기기(예: 개폐기 · 퓨즈 · 피뢰기 · 전압제한기 · 서지억제기 · 플러그와 기타 커넥터 · 접속함)(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8535.10.00	-퓨즈	5	0
8535.2	-자동차단기		
8535.21.00	--전압이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5	0
8535.29.00	--기타	5	0
8535.30.00	-격리용 개폐기와 회로단속용 개폐기	5	0
8535.40	-피뢰기 · 전압제한기와 서지억제기		
8535.40.10	---전력공급장치 보호용으로 적합한 피뢰기(서지변환기)	5	0
8535.40.90	---기타	5	0
8535.90.00	-기타	5	0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 또는 보호용 또는 접속용 전기식 기기(예: 개폐기 · 계전기 · 퓨즈 · 서지억제기 · 플러그 · 소켓 · 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 · 접속함)(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광섬유 · 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		
8536.10.00	-퓨즈	5	0
8536.20.00	-자동차단기	5	0
8536.30.00	-전기회로보호용의 기타 기기	5	0
8536.4	-계전기		
8536.41.00	--전압이 60 볼트 이하인 것	5	0
8536.49.00	--기타	5	0
8536.50	-기타 개폐기		
8536.50.10	---타임스위치(계전기가 없는 것)	5	0
8536.50.9	---기타		
8536.50.92	----다음의 물품: (가) 전자식 교류개폐기[광학적으로 짝지워진 입출력 회로로 구성된 것(절연처리된 사이리스터 교류개폐기)], (나) 전자식 개폐기[온도보호용의 것을 포함하고, 트랜지스터와 논리칩으로 구성된 것(칩온칩 기술)에 한하며 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전기기계식의 스냅동작 방식의 개폐기로서 전류가 11 암페어 이하인 것	0	0
8536.50.93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NSA	5	5
8536.50.99	----기타	5	0
8536.6	-램프홀더 · 플러그와 소켓		
8536.61.00	--램프홀더	5	0
8536.69	--기타		
8536.69.10	---동축케이블 또는 인쇄회로용의 플러그 및 소켓	0	0
8536.69.90	---기타	5	0
8536.70	-광섬유 · 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		
8536.70.1	---플라스틱제의 것		
8536.70.11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8536.70.19	----기타	5	0
8536.70.2	---철강제의 것		
8536.70.21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8536.70.29	----기타	5	0
8536.70.30	---유리제의 것	0	0
8536.70.40	---도자제의 것	5	0
8536.70.90	---기타 재료제의 것	5	0
8536.90	-기타 기기		
8536.90.10	---다음의 물품: (가)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 (나) 웨이퍼 프로버	0	0
8536.90.90	---기타	5	0
8537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 · 패널 · 콘솔 · 책상 · 캐비닛 및 기타 기반(基盤)(제 8535 호 또는 제 8536 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 90 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 8517 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8537.10	-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		
8537.10.10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	0	0
8537.10.90	---기타	5	0
8537.20	-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		
8537.20.10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	0	0
8537.20.90	---기타	5	0
8538	부분품(제 8535 호 · 제 8536 호 또는 제 8537 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8538.10	-보드 · 패널 · 콘솔 · 책상 · 캐비닛 및 기타 기반(제 8537 호의 물품용에 한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8538.10.10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용의 것	0	0
8538.10.90	---기타	5	0
8538.90	-기타		
8538.90.1	---제 8536.70 호의 물품의 것		
8538.90.11	----제 8536.70.11 호의 물품의 것	5	5
8538.90.12	----제 8536.70.19 호의 물품의 것	5	0
8538.90.13	----제 8536.70.21 호의 물품의 것	5	5
8538.90.14	----제 8536.70.29 호의 물품의 것	5	0
8538.90.15	----제 8536.70.30 호의 물품의 것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538.90.16	----제 8536.70.40 호의 물품의 것	5	0
8538.90.19	----기타	5	0
8538.90.90	---기타	0	0
8539	전기식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8539.10	-실드빔 램프유닛		
8539.10.10	---모터사이클용의 것	0	0
8539.10.90	---기타	5	5
8539.2	-기타 필라멘트 램프(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는 제외한다)		
8539.21.00	--텅스텐 할로겐	0	0
8539.22.00	--기타(전력이 200 와트 이하이고 전압이 1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	0
8539.29.00	--기타	5	0
8539.3	-방전램프(자외선램프는 제외한다)		
8539.31.00	--형광램프(열음극형의 것에 한한다)	5	0
8539.32.00	--수은 또는 나트륨증기 램프, 메탈 할라이드 램프	5	0
8539.39.00	--기타	5	0
8539.4	-자외선 또는 적외선램프, 아크램프		
8539.41.00	--아크 램프	5	0
8539.49.00	--기타	5	0
8539.90.00	-부분품	5	0
8540	열전자관·냉음극관 또는 광전관(예: 진공관 또는 증기 또는 가스를 봉입한 관·수은아크정류관·음극선관·텔레비전용 촬상관)		
8540.1	-텔레비전용 음극선관(영상 모니터용 음극선관을 포함한다)		
8540.11.00	--천연색의 것	0	0
8540.12.00	--단색의 것	0	0
8540.20.00	-텔레비전용 촬상관, 영상변환관과 영상증강관, 기타 광전관	0	0
8540.40.0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단색의 것), 데이터/그래픽 직시관(천연색인 것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 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0	0
8540.60.00	-기타 음극선관	0	0
8540.7	-마이크로웨이브관(예: 자전관·속도변조관·진행파관·카시노트론)(그리드제어관은 제외한다)		
8540.71.00	--자전관	0	0
8540.79.00	--기타	5	0
8540.8	-기타 관		
8540.81.00	--수신관 또는 증폭관	0	0
8540.89.00	--기타	5	0
8540.9	-부분품		
8540.91.00	--음극선관의 것	0	0
8540.99.00	--기타	0	0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또는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10.00	-다이오드(감광성 다이오드 또는 발광다이오드는 제외한다)	0	0
8541.2	-트랜지스터(감광성 트랜지스터는 제외한다)		
8541.21.00	--전력낭비율이 1 와트 미만인 것	0	0
8541.29.00	--기타	0	0
8541.30.00	-사이리스터, 다이액 및 트라이액(감광성 디바이스는 제외한다)	0	0
8541.40.0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또는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0	0
8541.50.00	-기타 반도체 디바이스	0	0
8541.60.00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0	0
8541.90.00	-부분품	0	0
8542	전자집적회로		
8542.3	-전자집적회로		
8542.31.00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과 타이밍 회로 또는 기타 회로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8542.32.00	--메모리	0	0
8542.33.00	--증폭기	0	0
8542.39.00	--기타	0	0
8542.90.00	-부분품	0	0
8543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8543.10.00	-입자가속기	0	0
8543.20.00	-신호발생기	5	0
8543.30.00	-전기도금·전기분해 및 전기영동(泳動)용 기기	5	0
8543.70.00	-기타 기기	0	0
8543.90	-부분품		
8543.90.10	---평판디스플레이 장치의 것	0	0
8543.90.20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0	0
8543.90.90	---기타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544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 · 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8544.1	-권선용 전선		
8544.11.00	--동제의 것	5	0
8544.19.00	--기타	5	0
8544.20.00	-동축케이블과 기타 동축 전기도체	5	0
8544.30.0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기타 와이어링 세트(자동차 · 항공기 또는 선박용의 것에 한한다)	5	5
8544.4	-기타 전기도체(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8544.42	--접속자가 부착된 것		
8544.42.1	---전압이 80 볼트 이하인 것		
8544.42.11	----다음의 물품: (가) 열전대용 콤펜세이션 또는 익스텐션 리드, (나)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0
8544.42.19	----기타	5	0
8544.42.2	---전압이 80 볼트 초과 1,000 볼트 이하인 것		
8544.42.21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0
8544.42.29	----기타	5	0
8544.49	--기타		
8544.49.1	---전압이 80 볼트 이하인 것		
8544.49.11	----다음의 물품: (가) 열전대용 콤펜세이션 또는 익스텐션 리드, (나) 전기통신용의 것	0	0
8544.49.19	----기타	5	0
8544.49.20	---전압이 80 볼트 초과 1,000 볼트 이하인 것	5	0
8544.60	-기타 전기도체(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8544.60.10	---작동 압력이 33 킬로볼트를 초과하도록 설계제작된 것	0	0
8544.60.90	---기타	5	0
8544.70.00	-광섬유 케이블	0	0
8545	탄소전극 · 탄소브러시 · 램프용 탄소 · 전지용 탄소와 기타 흑연 또는 탄소제품(전기용의 것에 한하며, 금속의 함유여부를 불문한다)		
8545.1	-전극		
8545.11.00	--노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0
8545.19.00	--기타	0	0
8545.20.00	-브러시	5	0
8545.90.00	-기타	0	0
8546	애자(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8546.10.00	-유리제의 것	5	0
8546.20.00	-도자제의 것	5	0
8546.90.00	-기타	5	0
8547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 8546 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卑)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에 한한다)		
8547.10.00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5	0
8547.20.00	-플라스틱제의 절연용 물품	0	0
8547.90.00	-기타	5	0
8548	일차전지, 일차배터리 및 전기식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일차배터리 및 전기식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548.10	-일차전지, 일차배터리 및 전기식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일차배터리 및 전기식 축전지		
8548.10.30	---수명이 끝난 축전지	5	0
8548.10.90	---기타	0	0
8548.90	-기타		
8548.90.10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0	0
8548.90.90	---기타	0	0
86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각종 교통신호용기기		
8601	철도용 기관차(외부전원 또는 전기식축전지로 주행하는 것에 한한다)		
8601.10.00	-외부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5	0
8601.20.00	-전기식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5	0
8602	기타 철도용 기관차, 탄수차		
8602.10.00	-디젤 전기기관차	5	0
8602.90.00	-기타	5	0
8603	자주식의 철도 또는 궤도용 객차 및 화차(제 8604.00.00 호의 것은 제외한다)		
8603.10.00	-외부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5	0
8603.90.00	-기타	5	0
8604.00.00	철도 또는 궤도의 유지 또는 보수용의 차량(자주식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예: 공작차 · 기중기차 · 밸러스트탬퍼 · 트랙라이너 · 검사차 및 궤도검사차)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605.00.00	철도 또는 궤도용의 객차(자주식의 것은 제외한다), 수하물차 · 우편차 및 기타 철도 또는 궤도용 특수용도차(자주식의 것과 제 8604.00.00 호의 것은 제외한다)	5	0
8606	철도 또는 궤도용의 화차(자주식의 것은 제외한다)		
8606.10.00	-탱크차 및 이와 유사한 것	5	0
8606.30.00	-자기양하식의 화차(제 8606.10.00 호의 것은 제외한다)	5	0
8606.9	-기타		
8606.91.00	--덮개가 있는 것으로서 밀폐되어 있는 것	5	0
8606.92.00	--무개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5	0
8606.99.00	--기타	5	0
8607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또는 차량의 부분품		
8607.1	-보우기 · 비셀보우기 · 차축과 차륜 및 이들의 부분품		
8607.11.00	--구동식의 보우기와 비셀보우기	5	0
8607.12.00	--기타 보우기와 비셀보우기	5	0
8607.19.0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5	0
8607.2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8607.21.00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5	0
8607.29.00	--기타	5	0
8607.30.00	-혹과 기타 연결장치 · 완충장치 및 이들의 부분품	5	0
8607.9	-기타		
8607.91.00	--기관차용의 것	5	0
8607.99.00	--기타	5	0
8608.00.00	철도 또는 궤도 선로용 장치물, 철도 · 궤도 · 도로 · 내륙수로 · 주차장 · 항만 또는 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신호 · 안전 또는 교통관제용의 기기, 이들의 부분품	5	0
8609.00.00	콘테이너(액체운반용 콘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제작되고 구조를 갖춘 것에 한한다)	0	0
87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701	트랙터(제 8709 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8701.10.00	-보행운전형 트랙터	0	0
8701.20.00	-세미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 트랙터	5	0
8701.30.00	-무한궤도식 트랙터	0	0
8701.90	-기타		
8701.90.1	---농업용 트랙터		
8701.90.11	----다음의 물품 (가) 엔진동력 15 킬로와트 이상의 것, (나) 엔진출력 15 킬로와트 미만의 단일 동력인출장치가 후방 차축과 후륜 페이싱(facing) 및 후방 유압리프트의 3 개 포인트가 결합되어 있는 것	0	0
8701.90.19	----기타	5	0
8701.90.20	---덤프용 트랙터	5	0
8701.90.90	---기타	5	0
8702	10 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의 자동차		
8702.10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		
8702.10.10	---다음의 물품: (가) 총중량이 3.5 톤 초과인것, (나) 총중량이 3.5 톤 이하인것,(조립된 것에 한한다)	5	3
8702.10.90	---기타	5	3
8702.90	-기타		
8702.90.10	---다음의 물품: (가) 총중량이 3.5 톤을 초과하는 것, (나) 총중량이 3.5 톤 이하인 것(조립된 것에 한한다)	5	3
8702.90.90	---기타	5	3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 차량(제 8702 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8703.10.00	-설상주행용으로 특수 설계제작된 차량, 골프용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5	0
8703.2	-기타 차량(불꽃점화식의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에 한한다)		
8703.21	--실린더 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8703.21.1	---승객 수송용 차량		
8703.21.11	----중고차	5 퍼센트+대당 12,000 달러	3A
8703.21.19	----기타	5	0
8703.21.20	---다음의 물품, NSA: (가) 총중량이 3.5 톤을 초과하는 것, (나) 총중량이 3.5 톤 이하인 것(조립된 것에 한한다)	5	0
8703.21.90	---기타	5	0
8703.22	--실린더 용량이 1,000 시시 초과 1,500 시시 이하인 것		
8703.22.1	---승객 수송용 차량		
8703.22.11	----중고차	5 퍼센트+대당 12,000 달러	3A
8703.22.19	----기타	5	0
8703.22.20	---다음의 물품, NSA: (가) 총중량이 3.5 톤을 초과하는 것, (나) 총중량이 3.5 톤 이하인 것(조립된 것에 한한다)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703.33.11	----중고차	5 퍼센트+대당 12,000 달러	3A
8703.33.19	----기타	5	3
8703.33.20	---다음의 물품, NSA: (가) 총중량이 3.5 톤을 초과하는 것, (나) 총중량이 3.5 톤 이하인 것(조립된 것에 한한다)	5	3
8703.33.90	---기타	5	0
8703.90	-기타		
8703.90.1	---승객 수송용 차량		
8703.90.11	----중고차	5 퍼센트+대당 12,000 달러	3A
8703.90.19	----기타	5	0
8703.90.20	---다음의 물품, NSA: (가) 총중량이 3.5 톤을 초과하는 것, (나) 총중량이 3.5 톤 이하인 것(조립된 것에 한한다)	5	0
8703.90.90	----기타	5	0
8704	화물운송용 차량		
8704.10.0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5	0
8704.2	-기타[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		
8704.21	--총중량이 5 톤 이하인 것		
8704.21.10	---다음의 물품: (가) 총중량이 3.5 톤을 초과하는 것, (나) 총중량이 3.5 톤 이하인 것(조립된 것에 한한다)	5	0
8704.21.90	---기타	5	0
8704.22.00	--총중량이 5 톤 초과 20 톤 이하인 것	5	0
8704.23.00	--총중량이 20 톤을 초과하는 것	5	0
8704.3	-기타(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에 한한다)		
8704.31	--총중량이 5 톤 이하인 것		
8704.31.10	---다음의 물품: (가) 총중량이 3.5 톤을 초과하는 것, (나) 총중량이 3.5 톤 이하인 것(조립된 것에 한한다)	5	3
8704.31.90	---기타	5	0
8704.32.00	--총중량이 5 톤을 초과하는 것	5	0
8704.90	-기타		
8704.90.10	---조립된 것	5	0
8704.90.90	---기타	5	0
8705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 또는 화물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 · 기중기차 · 소방차 ·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 도로청소차 · 살포차 · 이동공작차 · 이동방사선차)		
8705.10.00	-기중기차	5	0
8705.20.00	-이동식 시추용의 데릭차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703.22.90	---기타	5	0
8703.23	--실린더 용량이 1,500 시시 초과 3,000 시시 이하인 것		
8703.23.1	---승객 수송용 차량		
8703.23.11	----중고차	5 퍼센트+대당 12,000 달러	3A
8703.23.19	----기타	5	0
8703.23.20	---다음의 물품, NSA: (가) 총중량이 3.5 톤을 초과하는 것, (나) 총중량이 3.5 톤 이하인 것(조립된 것에 한한다)	5	3
8703.23.90	---기타	5	0
8703.24	--실린더 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8703.24.1	---승객 수송용 차량		
8703.24.11	----중고차	5 퍼센트+대당 12,000 달러	3A
8703.24.19	----기타	5	3
8703.24.20	---다음의 물품, NSA: (가) 총중량이 3.5 톤을 초과하는 것, (나) 총중량이 3.5 톤 이하인 것(조립된 것에 한한다)	5	3
8703.24.90	---기타	5	0
8703.3	-기타 차량[압축점화식의 피스톤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에 한한다]		
8703.31	--실린더 용량이 1,500 시시 이하인 것		
8703.31.1	---승객 수송용 차량		
8703.31.11	----중고차	5 퍼센트+대당 12,000 달러	3A
8703.31.19	----기타	5	0
8703.31.20	---다음의 물품, NSA: (가) 총중량이 3.5 톤을 초과하는 것, (나) 총중량이 3.5 톤 이하인 것(조립된 것에 한한다)	5	0
8703.31.90	---기타	5	0
8703.32	--실린더 용량이 1,500 시시 초과 2,500 시시 이하인 것		
8703.32.1	---승객 수송용 차량		
8703.32.11	----중고차	5 퍼센트+대당 12,000 달러	3A
8703.32.19	----기타	5	3
8703.32.20	---다음의 물품, NSA: (가) 총중량이 3.5 톤을 초과하는 것, (나) 총중량이 3.5 톤 이하인 것(조립된 것에 한한다)	5	0
8703.32.90	---기타	5	0
8703.33	--실린더 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8703.33.1	---승객 수송용 차량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705.30.00	-소방차	5	0
8705.40.0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5	0
8705.90.00	-기타	5	0
8706	엔진을 갖춘 섀시(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자동차용에 한한다)		
8706.00.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조립 또는 제조용	5	5
8706.00.9	---기타		
8706.00.91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8706.00.99	----기타	5	5
8707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자동차용에 한한다)		
8707.10	-제 8703 호의 차량용의 것		
8707.10.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조립 또는 제조용	5	5
8707.10.9	---기타		
8707.10.91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8707.10.99	----기타	5	5
8707.90	-기타		
8707.90.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8707.90.90	---기타	5	5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8708.10	-완충기와 그 부분품		
8708.10.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3
8708.10.90	---기타	5	3
8708.2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8708.21	--안전벨트		
8708.21.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3
8708.21.90	---기타	5	3
8708.29	--기타		
8708.29.30	---제 8701.10.00 호, 제 8701.30.00 호, 제 8701.90.1 호 또는 제 8701.90.90 호의 트랙터용의 것	0	0
8708.29.9	---기타		
8708.29.91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3
8708.29.99	----기타	5	3
8708.30	-브레이크와 서보브레이크, 그 부분품		
8708.30.1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8708.30.11	----제 8701.10.00 호, 제 8701.30.00 호, 제 8701.90.1 호 또는 제 8701.90.90 호의 트랙터용	0	0
8708.30.12	----기타(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3
8708.30.19	----기타	5	3
8708.30.9	---기타		
8708.30.91	----제 8701.90.90 호의 트랙터용의 것	5	0
8708.30.92	----제 8701.10.00 호, 제 8701.30.00 호 또는 제 8701.90.1 호의 트랙터용의 것	0	0
8708.30.93	----기타(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3
8708.30.99	----기타	5	3
8708.4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8708.40.4	---기어박스		
8708.40.41	----제 8701.10.00 호, 제 8701.30.00 호 , 제 8701.90.1 호 또는 제 8701.90.90 호의 트랙터용의 것	0	0
8708.40.42	----기타(승객 수송용차량의 조립 또는 제조용)	5	3
8708.40.43	----기타(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3
8708.40.49	----기타	5	3
8708.40.5	---제 8708.40.4 호의 부분품		
8708.40.51	----제 8701.10.00 호, 제 8701.30.00 호, 제 8701.90.1 호 또는 제 8701.90.90 호의 트랙터용의 것	0	0
8708.40.52	----기타(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3
8708.40.59	----기타	5	3
8708.5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기타 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과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		
8708.50.4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기타 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8708.50.41	----제 8701.10.00 호, 제 8701.30.00 호, 제 8701.90.1 호 또는 제 8701.90.90 호의 트랙터용의 것	0	0
8708.50.42	----기타(승객 수송용차량의 조립 또는 제조용)	5	3
8708.50.43	----기타(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3
8708.50.49	----기타	5	3
8708.50.5	---제 8708.50.4 호 물품의 부분품		
8708.50.51	----제 8701.10.00 호, 제 8701.30.00 호, 제 8701.90.1 호 또는 제 8701.90.90 호의 트랙터용의 것	0	0
8708.50.52	----기타(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3
8708.50.59	----기타	5	3
8708.50.6	---비구동차축과 그 부분품		
8708.50.61	----제 8701.10.00 호, 제 8701.30.00 호, 제 8701.90.1 호 또는 제 8701.90.90 호의 트랙터용의 것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708.50.62	----기타(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3
8708.50.69	----기타	5	3
8708.70	-로드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708.70.30	---제 8701.10.00 호, 제 8701.90.1 호 또는 제 8701.90.90 호의 트랙터용의 것	0	0
8708.70.9	---기타		
8708.70.91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3
8708.70.99	----기타	5	3
8708.80	-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를 포함한다)		
8708.80.4	---서스펜션 쇼크업소버		
8708.80.41	----제 8701.10.00 호, 제 8701.30.00 호, 제 8701.90.1 호 또는 제 8701.90.90 호의 트랙터용의 것	0	0
8708.80.42	----기타(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3
8708.80.49	----기타	5	3
8708.80.9	---기타		
8708.80.91	----제 8701.10.00 호, 제 8701.30.00 호, 제 8701.90.1 호 또는 제 8701.90.90 호의 트랙터용의 것	0	0
8708.80.92	----기타(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3
8708.80.99	----기타	5	3
8708.9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8708.91	--방열기와 그 부분품		
8708.91.3	---방열기		
8708.91.31	----제 8701.90.90 호의 트랙터용의 것	5	0
8708.91.32	----제 8701.10.00 호, 제 8701.30.00 호 또는 제 8701.90.1 호의 트랙터용의 것	0	0
8708.91.33	----기타(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3
8708.91.39	----기타	5	3
8708.91.4	---제 8708.91.3 호 물품의 부분품		
8708.91.41	----제 8701.10.00 호, 제 8701.30.00 호, 제 8701.90.1 호 또는 제 8701.90.90 호의 트랙터용의 것	0	0
8708.91.42	----기타(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3
8708.91.49	----기타	5	3
8708.92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그 부분품		
8708.92.4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8708.92.41	----제 8701.10.00 호, 제 8701.30.00 호, 제 8701.90.1 호 또는 제 8701.90.90 호의 트랙터용의 것	0	0
8708.92.42	----기타(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3
8708.92.49	----기타	5	3
8708.92.5	---제 8708.92.4 호 물품의 부분품		
8708.92.51	----제 8701.10.00 호, 제 8701.30.00 호, 제 8701.90.1 호 또는 제 8701.90.90 호의 트랙터용의 것	0	0
8708.92.52	----기타(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3
8708.92.59	----기타	5	3
8708.93	--클러치와 그 부분품		
8708.93.20	---제 8701.10.00 호, 제 8701.30.00 호, 제 8701.90.1 호 또는 제 8701.90.90 호의 트랙터용의 것	0	0
8708.93.30	---기타(승객 수송용 차량의 조립 또는 제조용)	5	3
8708.93.9	---기타		
8708.93.91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3
8708.93.99	----기타	5	3
8708.94	--운전대 · 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 그 부분품		
8708.94.4	---운전대, 스티어링 칼럼 및 운전박스		
8708.94.41	----제 8701.10.00 호, 제 8701.30.00 호, 제 8701.90.1 호 또는 제 8701.90.90 호의 트랙터용의 것	0	0
8708.94.42	----기타(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3
8708.94.49	----기타	5	3
8708.94.5	---제 8708.94.4 호 물품의 부분품		
8708.94.51	----제 8701.10.00 호, 제 8701.30.00 호, 제 8701.90.1 호 또는 제 8701.90.90 호의 트랙터용의 것	0	0
8708.94.52	----기타(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3
8708.94.59	----기타	5	3
8708.95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 그 부분품		
8708.95.10	---제 8701.10.00 호, 제 8701.30.00 호, 제 8701.90.1 호 또는 제 8701.90.90 호의 트랙터용의 것	0	0
8708.95.20	---기타(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3
8708.95.90	---기타	5	3
8708.99	--기타		
8708.99.20	---제 8701.10.00 호, 제 8701.30.00 호, 제 8701.90.1 호 또는 제 8701.90.90 호의 트랙터용의 것	0	0
8708.99.30	---섀시(승객 수송용 차량의 조립 또는 제조용의 것)	5	5
8708.99.9	---기타		
8708.99.91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3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708.99.99	----기타	5	3
8709	공장·창고·부두 또는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의 것으로 권양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되지 아니한 자주식의 작업트럭,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이들의 부분품		
8709.1	-차량		
8709.11.00	--전기식의 것	5	0
8709.19.00	--기타	5	0
8709.90.00	-부분품	0	0
8710.00.00	전차와 기타 장갑차량(자주식의 것에 한하며, 무기의 장비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0	0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사이드카		
8711.10.00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0	0
8711.20.00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초과 250 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0	0
8711.30.00	-실린더용량이 250 시시 초과 500 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0	0
8711.40.00	-실린더용량이 500 시시 초과 800 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0	0
8711.50.00	-실린더용량이 800 시시를 초과하는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0	0
8711.90.00	-기타	5	0
8712.00.00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이륜자전거와 기타 자전거(배달용 3 륜 자전거를 포함한다)	5	0
8713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기타 다른 방식의 기계구동식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713.10.0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0	0
8713.90.00	-기타	0	0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 8711 호부터 제 8713 호까지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		
8714.10	-모터사이클의 것(모페드의 것을 포함한다)		
8714.10.10	---배기장치와 그 부분품	5	0
8714.10.90	---기타	0	0
8714.20.00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것	0	0
8714.9	-기타		
8714.91.00	--프레임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5	0
8714.92.00	--휠 림과 스포크	0	0
8714.93.00	--허브(코스터 브레이킹허브와 허브브레이크는 제외한다) 및 프리휠 스프로켓 휠	0	0
8714.94.00	--브레이크(코스터 브레이킹허브와 허브브레이크를 포함한다) 및 그 부분품	0	0
8714.95.00	--안장	0	0
8714.96.00	--페달과 크랭크기어 및 이들의 부분품	0	0
8714.99.00	--기타	0	0
8715.00.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0	0
8716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 차량, 이들의 부분품		
8716.10.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의 것으로서 주거 또는 캠핑용의 것에 한한다)	5	0
8716.20.00	-농업용의 자동적재식 또는 자동 양하식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5	0
8716.3	-화물수송용의 기타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716.31.00	--탱커 트레일러와 탱커 세미트레일러	5	0
8716.39.00	--기타	5	0
8716.40.00	-기타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5	0
8716.80.00	-기타 차량	5	0
8716.90.00	-부분품	5	0
88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8801.00.00	기구와 비행선, 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기타 무동력 항공기	0	0
8802	기타 항공기(예: 헬리콥터·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서보비틀 및 우주선 발진로켓		
8802.1	-헬리콥터		
8802.11.00	--자중이 2,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0	0
8802.12.00	--자중이 2,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8802.20.00	-자중이 2,000 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기타 항공기	0	0
8802.30.00	-자중이 2,000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00 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기타 항공기	0	0
8802.40.00	-자중이 15,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기타 항공기	0	0
8802.60.00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및 서보비틀 및 우주선 발진로켓	0	0
8803	부분품(제 8801 호 또는 제 8802 호의 것에 한한다)		
8803.10.00	-프로펠러와 로터 및 이들의 부분품	0	0
8803.20.00	-기체지지부와 그 부분품	0	0
8803.30.00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의 기타 부분품	0	0
8803.90.00	-기타	0	0
8804.00.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 및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0	0
8805	항공기 발진기어, 갑판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기어, 지상비행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805.10.00	-항공기 발진기어와 그 부분품, 갑판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기어와 그 부분품	0	0
8805.2	-지상비행훈련장치와 그 부분품		
8805.21.00	--모의 공중전장치와 그 부분품	0	0
8805.29.00	--기타	0	0
89	선박과 수상 구조물		
8901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화물선·부선 및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 또는 화물수송용에 한한다)		
8901.10	-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각종의 페리보트		
8901.10.10	---총 선박용적이 150 톤 이하인 것	5	0
8901.10.90	---기타	0	0
8901.20	-탱커		
8901.20.10	---총 선박용적이 150 톤 이하인 것	5	0
8901.20.90	---기타	0	0
8901.30	-냉동선(제 8901.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8901.30.10	---총 선박용적이 150 톤 이하인 것	5	0
8901.30.90	---기타	0	0
8901.90	-기타 화물선과 화객선		
8901.90.10	---총 선박용적이 150 톤 이하인 것	5	0
8901.90.90	---기타	0	0
8902	어선,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의 선박		
8902.00.10	---총 선박용적이 150 톤 이하인 것	5	0
8902.00.90	---기타	0	0
8903	요트와 유람 또는 운동용의 기타 선박,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8903.10.00	-인플랫터블식의 것	5	0
8903.9	-기타		
8903.91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8903.91.10	---총 선박용적이 150 톤 이하인 것	5	0
8903.91.90	---기타	0	0
8903.92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는 제외한다)		
8903.92.10	---총 선박용적이 150 톤 이하인 것	5	0
8903.92.90	---기타	0	0
8903.99	--기타		
8903.99.10	---총 선박용적이 150 톤 이하인 것	5	0
8903.99.90	---기타	0	0
8904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		
8904.00.10	---총 선박용적이 150 톤 이하인 것	5	0
8904.00.90	---기타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8905	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기타 특수선박, 부선거,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 또는 작업대		
8905.10	-준설선		
8905.10.10	---총 선박용적이 150 톤 이하인 것	5	0
8905.10.90	---기타	0	0
8905.20	-시추대 또는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에 한한다)		
8905.20.10	---총 선박용적이 150 톤 이하인 것	5	0
8905.20.90	---기타	0	0
8905.90	-기타		
8905.90.10	---총 선박용적이 150 톤 이하인 것	5	0
8905.90.90	---기타	0	0
8906	기타 선박(군함 및 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8906.10	-군함		
8906.10.10	---총 선박용적이 150 톤 이하인 것	5	0
8906.10.90	---기타	0	0
8906.90	-기타		
8906.90.10	---총 선박용적이 150 톤 이하인 것	5	0
8906.90.90	---기타	0	0
8907	기타 물에 뜨는 구조물(예: 부교·탱크·코퍼댐·부잔교·부표 및 수로부표)		
8907.10.00	-인플랫터블식의 부교	5	0
8907.90.00	-기타	5	0
8908.00.00	선박과 기타 물에 뜨는 구조물(해체용의 것에 한한다)	0	0
90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01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 8544 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제의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프리즘·반사경과 기타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용품은 제외한다)		
9001.10.00	-광섬유·광섬유다발과 광섬유 케이블	5	0
9001.20.00	-편광재료제의 쉬트와 판	0	0
9001.30	-콘택트렌즈		
9001.30.10	---검안용의 것	5	0
9001.30.90	---기타	5	0
9001.40.00	-유리제의 안경렌즈	5	0
9001.50.00	-기타 재료제의 안경렌즈	5	0
9001.90	-기타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9001.90.30	---다음의 물품: (가) 안경용의 반가공된 렌즈 블랭크, (나) 고글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접안렌즈(배율이 없는 것에 한한다), (다) 차량용의 것(유리제는 제외한다), (라) 기타 유리제품(프리즘·반사경 또는 배율렌즈는 제외한다)	5	0
9001.90.90	---기타	0	0
9002	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기타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은 제외한다)		
9002.1	-대물렌즈		
9002.11.00	--카메라용·영사기용 또는 사진 확대기 또는 사진축소기용의 것	0	0
9002.19.00	--기타	0	0
9002.20.00	-필터	0	0
9002.90.00	-기타	0	0
9003	안경·고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용 테와 장착구 및 이들의 부분품		
9003.1	-테와 장착구		
9003.11.00	--플라스틱제의 것	5	0
9003.19.00	--기타 재료제의 것	5	0
9003.90.00	-부분품	5	0
9004	시력교정용·보호용 또는 기타용도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9004.10.00	-선글라스	5	0
9004.90.00	-기타	5	0
9005	쌍안경·단안경·기타 광학식의 망원경과 이들의 장착구, 기타 천체관측용 기기와 이의 장착구(전파관측용의 기기는 제외한다)		
9005.10.00	-쌍안경	0	0
9005.80.00	-기타 기기	0	0
9005.90.00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0	0
9006	사진기(영화용의 것은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 8539 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		
9006.10	-인쇄제판용 사진기		
9006.10.10	---선, 연속 색조 또는 하프톤 이미지를 위해 그래픽아트산업에서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사진기	5	0
9006.10.90	---기타	0	0
9006.30.00	-수중촬영용·공중측량용 또는 내과용 또는 외과용으로 특수 설계제작된 사진기, 법정비교용 사진기	0	0
9006.40.00	-즉석인화사진기	0	0
9006.5	-기타 사진기		
9006.51.00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파인더[싱글렌즈레플렉스(SLR)]를 갖춘 것(폭이 35 밀리미터 이하인 롤필름용의 것에 한한다)	0	0
9006.52.00	--기타(폭이 35 밀리미터 미만인 롤필름용의 것에 한한다)	0	0
9006.53.00	--기타(폭이 35 밀리미터인 롤필름용의 것에 한한다)	0	0
9006.59.00	--기타	0	0
9006.6	-사진용 섬광기구와 섬광전구		
9006.61.00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에 한한다)	0	0
9006.69.00	--기타	0	0
9006.9	-부분품 및 부속품		
9006.91.00	--카메라용의 것	0	0
9006.99.00	--기타	0	0
9007	영화용의 촬영기와 영사기(음성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007.10.00	-촬영기	0	0
9007.20.00	-영사기	0	0
9007.9	-부분품 및 부속품		
9007.91.00	--촬영기용의 것	0	0
9007.92.00	--영사기용의 것	0	0
9008	투영기·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영화용의 것은 제외한다)		
9008.50	-프로젝터, 확대기 및 축소기		
9008.50.10	---오버헤드 프로젝터	5	0
9008.50.90	---기타	0	0
9008.90.00	-부분품 및 부속품	0	0
901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현상실용의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네가토스코우프, 영사용 스크린		
9010.10.00	-롤상의 사진용(영화용을 포함한다) 필름이나 감광지를 자동현상하는 기기 또는 현상된 필름을 사진용 감광지에 자동노출시키는 기기	0	0
9010.5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현상실용의 기타 기기, 네가토스코우프		
9010.50.10	---다음의 물품: (가) 레이아웃 테이블, (나) 사진용 은회수 장치, (다) 진공틀	0	0
9010.50.20	---감광처리된 필름 또는 종이 처리용 기기, NSA	0	0
9010.50.90	---기타	0	0
9010.60.00	-영사용 스크린	5	0
9010.90	-부분품 및 부속품		
9010.90.10	---제 9010.50.90 호의 물품용의 것	0	0
9010.90.20	---제 9010.50.20 호 또는 제 9010.60.00 호의 물품용의 것	5	0
9010.90.90	---기타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9011	복합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 또는 마이크로 영사용의 것을 포함한다)		
9011.10.00	-입체현미경	0	0
9011.20.00	-기타 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 또는 마이크로 영사용의 것에 한한다)	0	0
9011.80.00	-기타 현미경	0	0
9011.90.00	-부분품 및 부속품	0	0
9012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 회절기		
9012.10.00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 회절기	0	0
9012.90.00	-부분품 및 부속품	0	0
9013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는 제외한다), 기타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013.10.00	-무기용의 망원조준기, 잠망경, 이 류 또는 제16부의 기기 부분품용의 망원경	0	0
9013.20.0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는 제외한다)	0	0
9013.80.00	-기타의 기기	0	0
9013.90.00	-부분품 및 부속품	0	0
9014	방향탐지용 컴퍼스, 기타의 항행용 기기		
9014.10.00	-방향탐지용 컴퍼스	0	0
9014.20.00	-항공용 또는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는 제외한다)	0	0
9014.80.00	-기타 기기	0	0
9014.90.00	-부분품 및 부속품	0	0
9015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의 것을 포함한다)·수로측량기기·해양측량기기·수리계측기기·기상관측기기 또는 지구물리학용기기(컴퍼스는 제외한다), 거리측정기		
9015.10.00	-거리측정기	0	0
9015.20.00	-경위의와 시거의(태코미터)	0	0
9015.30.00	-수준기	0	0
9015.40.00	-사진측량기기	0	0
9015.80.00	-기타 기기	0	0
9015.90.00	-부분품 및 부속품	0	0
9016.00.00	감량 50 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추의 유무를 불문한다)	0	0
9017	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예: 제도기·축소확대기·분도기·제도세트·계산척·계산반), 수지식의 길이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017.10.00	-제도판을 갖춘 제도기(자동식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9017.20	-기타 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		
9017.20.10	---다음의 물품: (가) 계산반 및 이와 유사한 것, (나) 제도용 곡자, (다) 플라스틱제 평형자, (라) 분도기, (마) 삼각자, (바) 스텐실	5	0
9017.20.90	---기타	0	0
9017.30.00	-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와 게이지류	0	0
9017.80	-기타 기기		
9017.80.20	---다음의 물품: (가) 목제 또는 플라스틱제 눈금자(접히는 것은 제외한다), (나)강철로 된 줄자	5	0
9017.80.80	---기타	0	0
9017.90.00	-부분품 및 부속품	0	0
9018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		
9018.1	-전기식 진단용 기기(기능검사용 또는 생리적 변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		
9018.11.00	--심전계	0	0
9018.12.00	--초음파 영상진단기	0	0
9018.13.00	--자기공명 촬영기기	0	0
9018.14.00	--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	0	0
9018.19.00	--기타	0	0
9018.20.00	-자외선 또는 적외선 응용기기	0	0
9018.3	-주사기·바늘·카테터·케눌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		
9018.31.00	--주사기(바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0	0
9018.32.00	--관 모양의 금속제 바늘 및 봉합용 바늘	0	0
9018.39.00	--기타	0	0
9018.4	-치과용의 기타 기기		
9018.41.00	--치과용 드릴엔진(하나의 베이스 위에 기타의 치과기기를 부착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9018.49.00	--기타	0	0
9018.50.00	-안과용의 기타 기기	0	0
9018.90.00	-기타 기기	0	0
9019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흡입기·산소흡입기·에어로졸치료기·인공호흡기 또는 기타 치료용 호흡기기		
9019.10.00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0	0
9019.20.00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 호흡기 또는 기타 치료용 호흡기기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9020.00.00	기타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아니한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0	0
9021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 및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및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 기기		
9021.10	-정형외과용 또는 골절치료용의 기기		
9021.10.10	---특정 정형외과의 장애 교정 목적으로 제작된 신발 및 특수 안창	0	0
9021.10.20	---정형외과 교정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신발(부분품은 제외한다), NSA	5	5
9021.10.30	---정형외과 교정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특수 안창(부분품은 제외한다), NSA	5	0
9021.10.4	---제 9021.10.20 호 또는 제 9021.10.30 호 물품용 부분품		
9021.10.41	----금속제의 것	5	0
9021.10.49	----기타	5	0
9021.10.90	---기타	0	0
9021.2	-의치와 치과용품		
9021.21.00	--의치	0	0
9021.29.00	--기타	0	0
9021.3	-기타 인조의 인체 부분		
9021.31.00	--인조관절	0	0
9021.39.00	-- 기타	0	0
9021.40.00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0	0
9021.50.00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0	0
9021.90.00	-기타	0	0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엑스선관과 기타 엑스선 발생기·고압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9022.1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를 포함한다)		
9022.12.00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0	0
9022.13.00	--기타(치과용의 것에 한한다)	0	0
9022.14.00	--기타(내과용·외과용 또는 수의용의 것에 한한다)	0	0
9022.19.00	--기타 용도의 것	0	0
9022.2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를 포함한다)		
9022.21.00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것	0	0
9022.29.00	--기타 용도의 것	0	0
9022.30.00	-엑스선관	0	0
9022.90.00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0	0
9023.00.00	전시용으로 설계제작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 또는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9024	재료(예: 금속·목재·직물·종이·플라스틱)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 또는 기타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		
9024.10.00	-금속시험용 기기	0	0
9024.80.00	-기타 기기	0	0
9024.90.00	-부분품 및 부속품	0	0
9025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9025.1	-온도계와 고온계(다른 기기와 결합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025.11.00	--액체를 넣은 것(직시식의 것에 한한다)	0	0
9025.19.00	--기타	0	0
9025.80.00	-기타 기기	0	0
9025.90.00	-부분품 및 부속품	0	0
9026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측정계)(제 9014 호·제 9015 호·제 9028 호 또는 제 9032 호의 것은 제외한다)		
9026.10	-액체의 유량 또는 액면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9026.10.2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하는 게이지	5	5
9026.10.80	---기타	0	0
9026.20	-압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9026.20.2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하는 게이지	5	5
9026.20.80	---기타	0	0
9026.80	-기타 기기		
9026.80.2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하는 게이지	5	5
9026.80.80	---기타	0	0
9026.90.00	-부분품 및 부속품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9030	오실로스코우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 9028 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9030.10.00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0	0
9030.20.00	-오실로스코우프와 오실로그래프	0	0
9030.3	-전압·전류·저항 또는 전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타 기기		
9030.31.00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0	0
9030.32.00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0	0
9030.33.00	--기타(기록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0	0
9030.39.00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0	0
9030.40.00	-전기통신용으로 특수 설계제작된 기타 기기(예: 누화계·게인측정계·만곡률계·잡음전압계)	0	0
9030.8	-기타의 기기		
9030.82.00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0	0
9030.84.00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0	0
9030.89.00	--기타	0	0
9030.90.00	-부분품 및 부속품	0	0
9031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윤곽 투영기		
9031.10	-균형시험기		
9031.10.20	---정지형 차량 휠 밸런서	5	0
9031.10.80	---기타	0	0
9031.20	-테스트벤치		
9031.20.10	---내연기관용 전기식의 것	5	0
9031.20.90	---기타	0	0
9031.4	-기타 광학식의 기기		
9031.41.00	--반도체 웨이퍼 또는 소자검사용 또는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 또는 레티클 검사용의 것	0	0
9031.49.00	--기타	0	0
9031.80.00	-기타 기기	0	0
9031.90.00	-부분품 및 부속품	0	0
9032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9032.10.00	-온도 자동조정용 기기	0	0
9032.20.00	-매노우스타트	0	0
9032.8	-기타 기기		
9032.81.00	--액압식 또는 공기식의 것	0	0
9032.89	--기타		
9032.89.1	---6 볼트 또는 12 볼트 시스템에서 자동차용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동 전압 조절기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9027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열·소리 또는 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		
9027.10.00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	0	0
9027.20.0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0	0
9027.30.00	-분광계·분광광도계 및 분광사진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0	0
9027.50.00	-기타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0	0
9027.80.00	-기타 기기	0	0
9027.90.00	-마이크로톰,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28	기체·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함한다)		
9028.10	-기체용 계기		
9028.10.10	---가정용 적산용 계기	5	0
9028.10.90	---기타	0	0
9028.20	-액체용 계기		
9028.20.10	---다음의 수량계: (가) 간접형의 것, (나) 직경 100 밀리미터 이하인 직접형의 것	5	0
9028.20.90	---기타	0	0
9028.30.00	-전기용 계기	5	0
9028.90.00	-부분품 및 부속품	0	0
9029	적산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 9014 호 또는 제 9015 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우프		
9029.10	-적산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9029.10.2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9029.10.80	---기타	0	0
9029.20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스트로보스코우프		
9029.20.1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9029.20.90	---기타	0	0
9029.90	-부분품 및 부속품		
9029.90.10	---제 9029.10.20 호 또는 제 9029.20.10 호의 물품용의 것	5	5
9029.90.90	---기타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9104.00.00	차량용 · 항공기용 · 우주선용 또는 선박용의 계기반 클록 및 이와 유사한 클록	0	0
9105	기타 클록		
9105.1	-자명종시계		
9105.11.00	--전기 구동식의 것	0	0
9105.19.00	--기타	0	0
9105.2	-벽 시계		
9105.21.00	--전기 구동식의 것	0	0
9105.29.00	--기타	0	0
9105.9	-기타		
9105.91.00	--전기 구동식의 것	0	0
9105.99.00	--기타	0	0
9106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 및 시계의 무브먼트나 동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서 시간을 측정 · 기록 또는 기타 다른 방식으로 표시하는 기기(예: 타임레지스터 · 타임레코더)		
9106.10.00	-타임레지스터, 타임레코더	5	0
9106.90.00	-기타	0	0
9107.00.00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 또는 동기전동기를 갖춘 것에 한한다)	5	0
9108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에 한한다)		
9108.1	-전기구동식의 것		
9108.11.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또는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0	0
9108.12.00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0	0
9108.19.00	--기타	0	0
9108.20.00	-자동권식의 것	0	0
9108.90.00	-기타	0	0
9109	클록무브먼트(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에 한한다)		
9109.10.00	-전기 구동식의 것	0	0
9109.90.00	-기타	0	0
9110	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미조립 또는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에 한한다)(무브먼트세트), 불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조립된 것에 한한다), 러프한 시계의 무브먼트		
9110.1	-휴대용시계의 것		
9110.11.00	--완전한 무브먼트(미조립 또는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에 한한다)(무브먼트세트)	0	0
9110.12.00	--불완전한 무브먼트(조립된 것에 한한다)	0	0
9110.19.00	--러프 무브먼트	0	0
9110.90	-기타		
9110.90.10	---제 9107.00.00 호의 물품의 것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9032.89.11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9032.89.19	----기타	0	0
9032.89.80	---기타	0	0
9032.90	-부분품 및 부속품		
9032.90.20	---승객 수송용 차량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9032.90.80	---기타	0	0
9033.00.00	제 90 류의 기계 · 기기 · 장치 또는 장비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91	시계와 그 부분품		
9101	손목시계 · 회중시계 및 기타 휴대용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스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9101.1	-손목시계(전기구동식의 것에 한하며, 스톱워치의 기능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101.11.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0	0
9101.19.00	--기타	0	0
9101.2	-기타의 손목시계(스톱워치의 기능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101.21.00	--자동권식의 것	0	0
9101.29.00	--기타	0	0
9101.9	-기타		
9101.91.00	--전기 구동식의 것	0	0
9101.99.00	--기타	0	0
9102	손목시계 · 회중시계 및 기타 휴대용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 91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9102.1	-손목시계(전기구동식의 것에 한하며, 스톱워치의 기능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102.11.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0	0
9102.12.00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0	0
9102.19.00	--기타	0	0
9102.2	-기타 손목시계(스톱워치의 기능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102.21.00	--자동권식의 것	0	0
9102.29.00	--기타	0	0
9102.9	-기타		
9102.91.00	--전기 구동식의 것	0	0
9102.99.00	--기타	0	0
9103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를 갖춘 클록(제 9104.00.00 호의 것은 제외한다)		
9103.10.00	-전기 구동식의 것	0	0
9103.90.00	-기타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9208	뮤지컬박스 · 페어그라운드오르간 ·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 · 기계식 자명조 · 뮤지컬소오와 기타의 악기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각종의 데코이 콜, 휘슬 · 호각과 기타 입으로 불어서 나는 소리로 신호하는 기구		
9208.10.00	-뮤지컬박스	0	0
9208.90.00	-기타	0	0
9209	악기의 부분품(예: 뮤지컬박스용의 메카니즘)과 부속품(예: 기계식 악기용의 카드 · 디스크와 롤), 박절기 · 음차와 각종의 조율관(調律管)		
9209.30.00	-악기용의 현	0	0
9209.9	-기타		
9209.91.00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0	0
9209.92.00	--제 9202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5	0
9209.94.00	--제 9207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0	0
9209.99.00	--기타	0	0
93	무기·총포탄,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01	군용무기(리볼버 · 피스톨과 제 9307.00.00 호의 무기는 제외한다)		
9301.10.00	-포병무기(예: 평사포 · 곡사포 및 박격포)	0	0
9301.20.00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 및 이와 유사한 발사장치	0	0
9301.90.00	-기타	0	0
9302.00.00	리볼버와 피스톨(제 9303 호 또는 제 9304.00.0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9303	기타 화기와 폭약으로 점화되는 이와 유사한 장치(예: 경기용의 산탄총과 라이플 · 총구장전화기 · 베리식 피스톨과 신호용 화염만을 발생하는 기타 장치 · 공포탄용 피스톨 및 리볼버 · 캡티브볼트형 무통도살기 · 줄발사총)		
9303.10.00	-총구장전화기	0	0
9303.20.00	-기타 스포츠용 · 수렵용 또는 표적사격용의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0	0
9303.30.00	-기타 스포츠용 · 수렵용 또는 표적사격용의 라이플	0	0
9303.90.00	-기타	0	0
9304.00.00	기타 무기(예: 스프링총, 공기총 또는 가스총 및 피스톨, 경찰봉)(제 9307.00.0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9305	부분품과 부속품(제 9301 호부터 제 9304.00.00 호까지의 것에 한한다)		
9305.10.00	-리볼버 또는 피스톨의 것	5	0
9305.20	-산탄총 또는 라이플의 것(제 9303 호의 것에 한한다)		
9305.20.10	---산탄총의 총열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9110.90.90	---기타	0	0
9111	휴대용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		
9111.10.00	-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케이스	0	0
9111.20.00	-비(卑)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0	0
9111.80.00	-기타 케이스	0	0
9111.90.00	-부분품	0	0
9112	클록케이스 및 이 류의 기타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		
9112.20.00	-케이스	0	0
9112.90.00	-부분품	0	0
9113	휴대용시계줄 · 휴대용시계밴드 및 휴대용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9113.10.00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5	0
9113.20.00	-비(卑)금속제의 것(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0	0
9113.90.00	-기타	5	0
9114	기타 시계의 부분품		
9114.10.0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0	0
9114.30.00	-문자판	0	0
9114.40.00	-지판과 브리지	0	0
9114.90.00	-기타	0	0
92	악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9201	피아노(자동피아노를 포함한다), 하프시코드와 기타 건반이 있는 현악기		
9201.10.00	-업라이트 피아노	0	0
9201.20.00	-그랜드 피아노	0	0
9201.90.00	-기타	0	0
9202	기타 현악기(예: 기타 · 바이올린 · 하프)		
9202.10.00	-활을 사용하는 것	0	0
9202.90.00	-기타	5	0
9205	관악기(예: 건반이 있는 파이프 오르간 · 아코디언 · 클라리넷 · 트럼펫 · 백파이프)(페어그라운드오르간과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은 제외한다)		
9205.10.00	-금관악기	0	0
9205.90.00	-기타	0	0
9206.00.00	타악기(예: 북 · 목금 · 심벌 · 캐스터넷트 · 마라카스)	5	0
9207	전기적으로 음이 발생 또는 증폭되는 악기(예: 오르간 · 기타 · 아코디언)		
9207.10.00	-건반악기(아코디온은 제외한다)	0	0
9207.90.00	-기타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9305.20.90	---기타	5	0
9305.9	-기타		
9305.91.00	--제 9301 호의 군용무기의 것	5	0
9305.99.00	--기타	5	0
9306	폭탄·유탄·어뢰·지뢰·미사일 및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기타 총포탄·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 및 탄약안에 충전되는 와드를 포함한다)		
9306.2	-산탄총용 탄약과 그 부분품, 공기총 탄환		
9306.21.00	--탄약	5	0
9306.29.00	--기타	0	0
9306.30.00	-기타 탄약과 그 부분품	5	0
9306.90.00	-기타	0	0
9307.00.00	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집	0	0
94	가구, 침구·메트리스·메트리스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와 램프,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9401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 9402 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9401.10.00	-항공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의자	0	0
9401.20.00	-자동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의자	5	3
9401.30.00	-회전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5	0
9401.40.00	-침대겸용의자(가든시트 또는 캠핑용 장비는 제외한다)	5	0
9401.5	-등나무·버드나무·대나무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의자		
9401.51.00	--대나무 또는 등나무의 것	5	0
9401.59.00	--기타	5	0
9401.6	-기타의 의자(프레임이 목제인 것에 한한다)		
9401.61.00	--의자의 속·용수철·카바등을 댄 것	5	0
9401.69.00	--기타	5	0
9401.7	-기타의 의자(프레임이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9401.71.00	--의자의 속·용수철·카바등을 댄 것	5	0
9401.79.00	--기타	5	0
9401.80.00	-기타의 의자	5	0
9401.90	-부분품		
9401.90.10	---항공용 의자의 것	0	0
9401.90.20	---차량용 의자의 것	5	5
9401.90.90	---기타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9402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가구류(예: 수술대·검사대·기계식 장비를 갖춘 병원용 침대·치과용 의자), 뒤로 젖히고 상하조절 및 회전기구를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이들의 부분품		
9402.10.00	-치과용 의자·이발용 의자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자 및 이들의 부분품	0	0
9402.90.00	-기타	5	0
9403	기타 가구와 그 부분품		
9403.10.00	-사무실용 금속제가구	5	0
9403.20.00	-기타 금속제가구	5	0
9403.30.00	-사무실용 목제가구	5	0
9403.40.00	-주방용 목제가구	5	0
9403.50.00	-침실용 목제가구	5	0
9403.60.00	-기타 목제가구	5	0
9403.70.00	-플라스틱제의 가구	5	0
9403.8	-기타 재료제의 가구(등나무·버드나무·대나무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제의 것을 포함한다)		
9403.81.00	--대나무 또는 등나무의 것	5	0
9403.89.00	--기타	5	0
9403.90.00	-부분품	5	0
9404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누비이불·우모이불·쿠션·푸우프·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라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		
9404.10.00	-매트리스 서포트	0	0
9404.2	-매트리스		
9404.21.00	--셀룰로오스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	0	0
9404.29.00	--기타 재료제의 것	0	0
9404.30.00	-슬리핑 백	5	0
9404.90.00	-기타	5	0
9405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405.10.00	-샨데리아와 기타 천장용 또는 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기구(공공장소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은 제외한다)	5	0
9405.20.00	-전기식의 테이블·책상·침대 또는 마루스탠드 램프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9504.50	-비디오게임콘솔 및 비디오게임기(제 9504.30.00 호의 것은 제외한다)		
9504.50.10	---비디오 게임용구(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0	0
9504.50.90	---기타	5	0
9504.90	-기타		
9504.90.10	---책	0	0
9504.90.90	---기타	5	0
9505	축제·카니발 또는 기타 오락용품[마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		
9505.10.00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5	0
9505.90.00	-기타	5	0
9506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		
9506.1	-설상스키와 기타 설상스키용품		
9506.11.00	--스키	0	0
9506.12.00	--스키파스닝(스키바인딩)	0	0
9506.19.00	--기타	5	0
9506.2	-수상스키·파도타기널판·세일보드와 기타 수상운동용구		
9506.21.00	--세일보드	5	0
9506.29.00	--기타	5	0
9506.3	-골프채와 기타 골프용품		
9506.31.00	--골프채(완제품의 것에 한한다)	5	0
9506.32.00	--공	5	0
9506.39.00	--기타	5	0
9506.40.00	-탁구용구	5	0
9506.5	-테니스용·배드민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라켓(줄을 맨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506.51.00	--로은테니스 라켓(줄을 맨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9506.59.00	--기타	0	0
9506.6	-공(골프공과 탁구공은 제외한다)		
9506.61.00	--로은테니스 공	0	0
9506.62.00	--공기를 넣어 부풀게 하는 것	5	0
9506.69.00	--기타	5	0
9506.70.00	-아이스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5	0
9506.9	-기타		
9506.91.00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품	5	0
9506.99	--기타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9405.30.00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세트	5	0
9405.40.00	-기타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5	0
9405.5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9405.50.10	---유리제의 촛대	0	0
9405.50.90	---기타	5	0
9405.60.00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5	0
9405.9	-부분품		
9405.91.00	--유리제의 것	5	0
9405.92.00	--플라스틱제의 것	5	0
9405.99.00	--기타	5	0
9406.00.00	조립식 건축물	5	0
95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503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각종의 퍼즐		
9503.00.10	---어린이용으로 설계제작된 바퀴달린 완구(예: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것, 인형용의 차	5	0
9503.00.20	---사람 모형의 인형(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5	0
9503.00.30	---동물 또는 인간이 아닌 생명체 모형의 완구	5	0
9503.00.40	---다음의 물품 (가) 완구용 악기류, (나) 책	0	0
9503.00.50	---퍼즐(책은 제외한다)	5	0
9503.00.60	---다음의 물품: (가) 전기식 기차(궤도·신호기기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나) 축소모형의 조립용 키트(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9503.00.70	---다음의 기타 물품: (가)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 (나) 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된 완구	5	0
9503.00.80	---기타 완구 및 모형(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0	0
9503.00.9	---기타		
9503.00.91	----금속제의 것	5	0
9503.00.99	----기타	5	0
9504	비디오게임콘솔 및 비디오게임기·유희용구·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 게임용 특수테이블과 자동식의 볼링 유희장 용구를 포함한다)		
9504.20.00	-각종의 당구용구와 부속품	5	0
9504.30.00	-기타 게임(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 또는 기타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에 한하며 자동식 볼링 유희장 용구는 제외한다)	5	0
9504.40.00	-오락용 카드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9506.99.10	---어린이용 놀이시설 기구	5	0
9506.99.90	---기타	5	0
9507	낚싯대·낚시바늘과 기타 낚시용구, 낚시용의 망·포충망과 이와 유사한 망, 유인용 새(제 9208 호 또는 제 9705.00.00 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 또는 사격 용구		
9507.10.00	-낚싯대	5	0
9507.20.00	-낚싯바늘(낚시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9507.30.00	-낚시 릴	5	0
9507.90.00	-기타	5	0
9508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기타 흥행장용품, 순회서커스용·순회동물원용 용품·순회극장용 용품		
9508.10.00	-순회서커스용과 순회동물원용 용품	5	0
9508.90.00	-기타	5	0
96	잡품		
9601	가공한 아이보리·뼈·귀갑·뿔·사슴뿔·산호·자개·기타 동물성의 조각용 재료 및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		
9601.10.00	-가공한 아이보리와 그 제품	0	0
9601.90.00	-기타	5	0
9602	가공한 식물성 또는 광물성의 조각용 재료 및 그 제품, 성형품 또는 조각품(왁스·스테아린·천연수지 또는 모델링페이스트제의 것에 한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성형품 또는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젤라틴(제 3503 호의 젤라틴은 제외한다)과 비경화젤라틴의 제품		
9602.00.10	---빈 젤라틴 캡슐	5	0
9602.00.90	---기타	5	0
9603	비·브러시(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모프와 깃 먼지털이, 비 또는 브러시 제조용으로 묶었으며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스퀴지(롤러스퀴지는 제외한다)		
9603.10.00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 또는 기타 식물성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에 한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0
9603.2	-칫솔·면도용 브러시·헤어브러시·네일브러시·아이래쉬 브러시 및 기타 인체용의 화장용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9603.21.00	--칫솔(덴탈플레이트 브러시를 포함한다)	5	0
9603.29.00	--기타	5	0
9603.30.00	-회화용의 붓·필기용의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의 붓	5	0
9603.40.00	-페인트용·디스템퍼용·바니시용 또는 이와 유사한 브러시(제 9603.30.00 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5	0
9603.50.00	-기타 브러시(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에 한한다)	5	0
9603.90.00	-기타	5	0
9604.00.00	수동식의 체 및 어레미	0	0
9605.00.00	개인용의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 또는 신발 또는 의류 청소용의 것에 한한다)	0	0
9606	단추·프레스파스너·스냅파스너와 프레스스터드·단추의 몰드와 이들의 부분품, 단추블랭크		
9606.10.00	-프레스파스너·스냅파스너와 프레스스터드 및 이들의 부분품	5	0
9606.2	-단추		
9606.21.00	--플라스틱제의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아니한 것	5	0
9606.22.00	--비(卑)금속제의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아니한 것	0	0
9606.29.00	--기타	5	0
9606.30.00	-단추의 몰드와 단추의 기타 부분품, 단추블랭크	0	0
9607	슬라이드파스너와 그 부분품		
9607.1	-슬라이드파스너		
9607.11.00	--체인스쿠프가 비(卑)금속제의 것	5	0
9607.19.00	--기타	5	0
9607.20.00	-부분품	5	0
9608	볼펜, 팁이 펠트로 된 것과 기타 포러스팁으로 된 펜과 마커, 만년필·스틸로그래프펜과 기타 펜, 철필, 프로펠링 또는 슬라이딩 펜슬, 펜홀더·펜슬홀더와 이와 유사한 홀더, 이들의 부분품(캡과 크립을 포함하며 제 9609 호의 것은 제외한다)		
9608.10.00	-볼펜	5	0
9608.20.00	-팁이 펠트로 된 것과 기타 포러스팁으로 된 펜과 마커	5	0
9608.30	-만년필·스틸로그래프 펜과 기타 펜		
9608.30.10	---인디언 잉크용의 드로잉 펜	0	0
9608.30.90	---기타	5	0
9608.40.00	-프로펠링 또는 슬라이딩 펜슬	5	0
9608.50.00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0	0
9608.60.00	-볼펜용의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에 한한다)	5	0
9608.9	-기타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9608.91.00	--펜촉과 닙포인트	0	0
9608.99.00	--기타	5	0
9609	연필(제 9608 호의 펜슬은 제외한다)·크레용·연필심·파스텔·도화용의 목탄·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초크와 재단사용의 초크		
9609.10.00	-연필과 크레용(견고한 집속에 심을 넣은 것에 한한다)	5	0
9609.20.00	-연필심(검은색 또는 색깔이 있는 것에 한한다)	0	0
9609.90.00	-기타	0	0
9610.00.00	석판과 보드(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면을 갖춘 것에 한하며, 틀의 유무를 불문한다)	5	0
9611.00.00	일부인·봉합용 스탬프 또는 넘버링 스탬프 및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에 날인 또는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의 것에 한한다), 수동식의 컴포징 스틱 및 컴포징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의 인쇄용 세트	0	0
9612	타자기용 리본 또는 이와 유사한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달리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것을 포함하며, 스풀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잉크 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는지 상자들이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612.10.00	-리본	5	0
9612.20.00	-잉크 패드	5	0
9613	담배 라이터와 기타 라이터(기계식 또는 전기식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라이터 돌과 심지는 제외한다)		
9613.10.00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에 한한다)	0	0
9613.20.00	-포켓용 라이터(가스 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에 한한다)	0	0
9613.80	-기타 라이터		
9613.80.10	---테이블 라이터	0	0
9613.80.90	---기타	5	5
9613.90.00	-부분품	0	0
9614.00.00	흡연용 파이프(파이프 볼을 포함한다)와 시가 또는 시가렛홀더 및 이들의 부분품	0	0
9615	빗·헤어슬라이드와 이와 유사한 물품, 머리핀·컬링핀·컬링그립·헤어컬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 8516 호의 것은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9615.1	-빗·헤어슬라이드와 이와 유사한 물품		
9615.11.00	--경화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	5	0
9615.19.00	--기타	0	0
9615.90.00	-기타	5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9616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와 두부, 화장용 분첩과 패드		
9616.10.00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와 두부	0	0
9616.20.00	-화장용 분첩과 패드	0	0
9617.00.00	보온병과 기타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에 한한다), 그 부분품(유리제의 내부용기는 제외한다)	0	0
9618.00.00	마네킹 인형과 기타 모델형 인형, 자동인형과 기타 쇼윈도 장식용의 움직이는 전시용품	0	0
9619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 유아용 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재질을 불문한다)		
9619.00.10	---제지용 펄프·종이·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 섬유의 웨브 또는 방직용 섬유 워딩으로 만든 다음의 물품 (가) 요실금 패드(접착성 테이프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나) 성인용 팬티 또는 냅킨	5	0
9619.00.2	---제지용 펄프·종이·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 섬유의 웨브 또는 방직용 섬유 워딩으로 만든 물품, NSA		
9619.00.21	----탐폰	0	0
9619.00.29	----기타	5	0
9619.00.30	---위생용품, NSA(여성 또는 소녀용 브리프나 팬티 또는 남성용 또는 소년용 언더팬츠나 브리프)	10	5
9619.00.4	---의류, NSA		
9619.00.41	----유아용의 것	10	5
9619.00.49	----기타	10	5
9619.00.50	---의류 부속품	0	0
9619.00.60	---플라스틱제의 위생용품, NSA	5	0
9619.00.90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5	0
97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9701	회화·데생과 파스텔(전적으로 육필한 것에 한하며, 제 4906.00.00 호의 데생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9701.10.00	-회화·데생과 파스텔	0	0
9701.90.00	-기타	0	0
9702.00.00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0	0
9703.00.00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0	0
9704.00.00	우표 또는 수입인지·우편요금 별납증서·초일봉투·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불문하고 제 4907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9705.00.00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 또는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에 한한다]	0	0

HS 2012	품목명	최혜국 기준세율 (2010)	양허 유형
9706.00.00	골동품(제작후 100 년을 초과한 것에 한한다)	0	0

제 3 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 1 절
원산지 규정

제 3.1 조
원산지 상품

이 장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제3.2조의 의미 내에서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경우

나. 상품이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다. 상품이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1인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수행된 절차의 결과로서 부속서 3-가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라. 상품이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달리 갖춘 경우

제 3.2 조
완전하게 획득된 상품

제3.1조가호의 목적상, 다음 상품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채취되거나 추출된 광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

나.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성 상품[2]

다.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라.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마.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토, 내수 및 영해의 바깥 한계 내에서 수행된 수렵, 덫사냥, 채집, 포획, 양식 또는 어로로 획득된 상품

[2] 이 장의 목적상, "식물성 상품"은 식물, 균류, 조류 및 이들의 상품을 포함한다.

바. 당사국에 등록되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양 당사국의 영해 밖의 바다,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에서 잡힌 어류, 패류와 그 밖의 해양생물

사. 바호에 언급된 어류, 패류 또는 그 밖의 해양생물로부터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상품. 다만, 그러한 가공선박은 한쪽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

아. 어류, 패류 및 그 밖의 해양생물을 제외하고,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밖의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에서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채취되거나 추출된 상품. 다만,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은 그러한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다만, 이 상품은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획득되고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가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차.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1)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생산, 또는

2)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카. 더 이상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상품, 그리고

타. 모든 생산단계에서 이 조에 언급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만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

제 3.3 조
역내가치포함비율

1. 부속서 3-가에서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명시하는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에 따라 산정된다.

가. 공제법

$$\text{역내가치포함비율 (RVC)} = \frac{\text{조정가치(AV)}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조정가치(AV)}} \times 100$$

나. 집적법

$$\text{역내가치포함비율 (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text{조정가치(AV)}} \times 100$$

이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은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조정가치(AV)는 상품의 조정가치이며, 아래와 같다.

가.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드는 운송 및 보험 비용을 포함하여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가치, 또는

나. 상품의 본선인도가격 가치가 없거나 알지 못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된 가치

비원산지재료가치(VNM)는 제3.4조에 의하여 결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재료를 포함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 그리고

원산지재료가치(VOM)는 제3.4조에서 결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

2.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고려된 모든 비용은 상품이 생산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적용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합치되게 기록되고 유지된다.

3.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상 모든 가치는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된다. 이 목적상, 관세평가협정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국내 거래에 적용된다.

제 3.4 조
재료의 가치

1. 제2항을 조건으로, 제3.3조에 언급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가.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직접 수입된 재료의 경우, 재료 수입 시 운임보험료포함가격, 또는

나. 상품이 생산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획득된 재료의 경우,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최초로 확인할 수 있는 비원산지재료의 가치

2. 제1항의 목적상, 제1항에 따라 포함된 경우, 다음은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에서 차감될 수 있다.

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의 가치

나.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간에 생산자의 소재지로 재료를 운송하는 데서 발생한 화물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다.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관세 또는 조세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여, 면제 · 환급 · 환급가능하거나 달리 회수가능한 관세 및 조세 이외의 것으로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납부된 재료에 대한 관세 · 조세 및 통관 중개수수료, 그리고

라.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가공비용

3. 제4항을 조건으로, 제3.3조에 언급된 원산지재료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가.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직접 수입된 재료의 경우, 재료 수입 시 운임 보험료포함가격

나. 상품이 생산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획득된 재료의 경우, 그 재료의 가치, 또는

다. 자가생산된 재료의 경우, 일반 경비를 포함하여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 및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부가되는 이윤에 상당하는 이윤액

4. 제3항의 목적상, 제3항에 따라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은 원산지재료의 가치에 추가될 수 있다.

가.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간에 생산자의 소재지로 재료를 운송하는 데서 발생한 화물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그리고

나.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관세 또는 조세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여, 면제 · 환급 · 환급가능하거나 달리 회수가능한 관세 및 조세 이외의 것으로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납부된 재료에 대한 관세 · 조세 및 통관 중개수수료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산지 상품이 그 이후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목적상 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상품이 그 이후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목적상 그 비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만이 고려된다.

제 3.5 조
누적

1.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2.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는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다. 다만, 그 상품은 제3.1조 요건과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 3.6 조
최소허용수준

1. 부속서 3-가에 따른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품이라 할지라도,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조정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이다. 다만, 그러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는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위하여는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에 포함되고 그 상품이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한다.

2. 비원산지재료가 이 조의 원산지로 결정되는 상품과 다른 소호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제1항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1류부터 제14류까지로 분류된 상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1항과 제2항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0301호부터 제0303호까지, 제0305호부터 제0308호까지, 제0701호부터 제0710.10호까지, 제0713호부터 제0714호까지, 제0801호부터 제0810호까지, 그리고 제0813.10호부터 제0813.40호까지로 분류된 상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된 상품은, 그 상품의 세번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고,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비원산지 섬유 또는 원사의 총중량이 그 상품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제 3.7 조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

1. 수입자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이라고 신청할 수 있다.

가. 각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를 물리적으로 분리한 경우, 또는

나.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또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 의하여 달리 인정되는, 평균법, 후입선출법(LIFO) 또는 선입선출법(FIFO)과 같은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한 경우

2. 특정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선택된 재고관리기법은 그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인의 회계연도 동안 그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제 3.8 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상품과 함께 제출 및 분류되고, 수입 시 그 상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원산지는,

가. 그 상품이 세번변경요건의 적용대상인 경우, 고려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인 경우,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있어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다만,

다.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송장에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로 확인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아니하고, 그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라.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수량과 가치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제 3.9 조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1. 상품의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2.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제1항에 기술된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있어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제 3.10 조
운송 및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1. 운송 및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목적상, "운송 및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란 운송기간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말하며, 소매용으로 포장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3.11 조
간접재료

1. 상품이 원산지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간접재료는 원산지재료로 취급된다.

2. 제1항의 목적상, "간접재료"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나,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도 아니하고 그 일부를 구성하지도 아니하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가. 연료 및 에너지

나. 도구, 형판 및 주형

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보급품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사. 촉매제 및 용제, 그리고

아. 상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제 3.12 조
불인정 공정

1. 이 장의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공정 또는 처리 중 하나 이상을 거친다는 이유만으로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제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나.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다. 세탁, 세척 또는 먼지 · 녹 · 기름 ·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연마, 단순 분쇄 또는 파쇄 또는 단순 절단

마. 병 · 캔 · 플라스크 · 가방 ·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

바.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사. 분해, 또는

아. 어떠한 물리적 변화도 없는 상품의 단순한 재분류

2.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되는 모든 공정과 처리는 그 상품에 가하는 공정과 처리가 제1항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함께 고려된다.

제 3.13 조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국은 특정 상품이 한국에서 수출되고 그 이후 한국에 재수입된 재료에 대해서 한국 밖에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는 것에 합의한다. 다만, 그 작업 또는 가공은 부속서 3-나에 따라 양 당사국이 지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 3.14 조
직접 운송

1. 원산지 상품은 제3.1조에 따라 결정된 원산지 지위를 유지한다. 다만, 그 상품은 비당사국 영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2. 비당사국 영역을 통하여 운송되는 원산지 상품은 다음의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결정된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지 아니한다.

가.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보관, 재포장, 재라벨링[3],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어떠한 그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공정을 거치는 경우, 또는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제 2 절
원산지 절차

제 3.15 조
원산지 증명서

1.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고 특혜관세를 받을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신청은 원산지 증명서로 뒷받침된다.

2.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하며,

가. 그에 기술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나. 하나 이상의 상품에 대하여 만들어지고 여러 종류의 상품을 포함할 수 있다.

다. 인쇄본 또는 전자본을 포함한 그러한 그 밖의 수단으로 작성한다. 그리고

라. 영어로 작성되고 부속서 3-다의 지침에 규정된 자료요소를 포함한다. 원산지 증명서 표준서식은 부속서 3-라에 따른다.

3.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그 수출자는 다음에 기초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다.

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수출자의 인지, 또는

나. 생산자가 제공한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원산지 증명서와 같은 서면 신고서 또는 진술서

4. 이 조 내의 어떠한 규정도 상품의 수출자가 아닌 생산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또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면 신고서 또는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에 적용된다.

가. 당사국의 영역으로 하나 이상의 상품의 단일 수입, 또는

나.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 기간 이내에 발생하는 그에 기술된 상품의 복수 수입

6. 원산지 증명서는 원산지 증명서의 서명일 후 최소 2년 동안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

7. 이 협정이 발효한 날 또는 그 이후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발효일 전에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증명서를 수락한다.

제 3.16 조
권한 있는 기관

1. 제3.15조에 더하여, 호주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제출된 서면 신청서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발급될 수 있다.

2. 호주는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권한 있는 기관이 원산지 증명서 매 신청마다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가. 그에 기술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 그리고

[3] 이 항의 목적상, "재라벨링"이란 수입 당사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라벨을 붙이는 것을 말하며, "재포장"이란 수입 당사국 영역으로 상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포장 공정을 말한다.

나. 원산지 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빙서류와 일치한다는 것

3. 호주는 권한 있는 기관이 원산지 증명서 사본과 증빙서류를 증명서 발급일 후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그러한 문서는 디지털, 광학, 자기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로 보관될 수 있다.

4. 호주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가 정확하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된 인에게 신속히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규정한다.

5. 호주는 권한 있는 기관의 명칭, 주소, 견본 인장 날인 및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세부사항을 한국에 통보한다.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신속히 통보한다.

제 3.17 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1. 이 장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부여한다.

가. 수입자가 수입 시점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경우

나.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

다. 수입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상 요구되는 경우에는 세관 수입 신고 당시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소지하는 경우, 그리고

라. 수입 당사국 관세행정기관의 요청에 대하여,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 사본 및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상품 수입에 관련된 그 밖의 그러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2. 수입자가 신청의 근거가 된 원산지 증명서가 정확하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세관 수입 신고서를 정정하고 납부하여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제 3.18 조
수입 이후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각 당사국은, 상품이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상품 자격을 갖춘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는 상품이 수입된 날 후 최소 1년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보다 더 긴 기간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상품에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한 결과로 납부한 모든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한다.

가. 원산지 증명서 및 적절한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그 밖의 증거, 그리고

나. 신청된 특혜관세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하여 관세행정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수입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

제 3.19 조
원산지 증명서 면제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가. 관세가격이 한국의 경우 미화 1,000 달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 그리고 호주의 경우 호주달러 1,000 달러이나, 각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품 수입의 경우, 또는

나. 수입 당사국이 원산지 증명서 요건을 면제한 상품 수입의 경우

다만, 수입이 제3.15조 및 제3.17조의 증명서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준비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3.20 조
불일치 및 변형

1. 상품의 원산지에 의심이 없는 경우, 서류상 사소한 표기의 오류나 불일치가 있더라도, 그 서류가 제출된 상품에 해당하는 것이 적절히 입증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가 그 사실 자체로 인하여 무효화되지는 아니한다.

2. 부속서 3-라에 규정된 표준서식에서 원산지 증명서 서식이 변형되더라도 원산지 증명서가 무효화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원산지 증명서는 부속서 3-다에 규정된 자료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제 3.21 조
수출에 관한 의무

1.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요청에 의하여 그 관세행정기관에 원산지 증명서 사본과 그 밖의 그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거나,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였고, 그 원산지 증명서가 정확하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증명서를 제공한 모든 인에게 그 원산지 증명서의 정확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경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수입 또는 수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제출된 상품의 원산지에 관련된 허위 원산지 증명서 또는 문서의 발급에 대한 벌칙을 유지한다.

제 3.22 조
기록유지요건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거나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그 원산지 증명서가 서명된 날부터 5년간 그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증명서를 제공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유지한다. 그리고

나.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그 상품의 수입일부터 5년간,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그 상품의 수입에 관련하여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문서를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이용하여 제1항에 명시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 3.23 조
원산지 검증

1.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한쪽 당사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가.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요청

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성 검증 요청

다.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요청

라. 수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게 상품의 원산지 검증의 지원 요청, 또는

마. 시설 및 상품의 생산과정을 시찰하고 회계서류를 포함한 원산지를 언급하는 기록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 방문

2. 제1항 가호, 나호 및 다호의 목적상, 관세행정기관은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하여 서면 요청일부터 30일 간 응답할 기간을 허용한다. 이 기간 동안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은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연장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3. 이 조와 제3.24조의 목적상, 수입 당사국이 요청하고 수출 당사국이 응답하는 모든 정보는 영어로 전달된다.

4.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특혜관세대우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1항의 조치를 수입 당사국의 법, 규정 또는 행정절차에 명시된 기간 내에 완료한다. 관세행정기관은, 검증 조치를 완료하는대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그 결정과 결정의 근거가 된 법적 근거와 조사결과에 대한 서면의견을 제공한다. 검증 방문을 행한 경우, 관세행정기관은 수출 당사국에도 그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공한다.

제 3.24 조
검증 방문

1. 제3.23조제1항마호에 따른 검증 방문 수행 이전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그들의 사업장 검증 방문을 할 것임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그리고

나.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동의를 얻는다.

2.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제1항가호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된 검증 방문에 대한 서면동의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3. 제1항가호에 언급된 서면요청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요청을 하는 관세행정기관의 신원

나. 그 요청의 대상이 되는, 수출 당사국 내의 상품 수출자의 이름

다. 서면요청이 이루어진 날짜

라. 제안된 방문 날짜와 장소

마. 원산지 증명서에 언급된 검증의 대상인 상품의 특정 참조를 포함한 제안된 방문의 목적과 범위, 그리고

바. 방문에 참여할 수입 당사국 관세행정기관의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

4.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이 조에 따라 검증 방문의 요청 시 수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통보한다.

5. 수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 공무원은 참관자로서 검증 방문에 참여할 수 있다.

제 3.25 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1.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거나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가. 상품이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상품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특혜관세대우를 획득하기 위한 모든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못했을 경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기록 또는 문서의 유지를 못하거나 못했을 경우

다.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3.23조제2항에 따라 그 당사국이 요청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라. 제3.24조제1항에 따라 검증 방문을 위한 서면 통보를 접수한 후,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3.24조제2항에 따라 서면 동의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3.23조제1항마호에 언급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기록, 생산 공정 또는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2. 수입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제3.23조에 따른 원산지 검증 조치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조치의 기간 또는 일부 기간 동안 특혜관세대우의 적용을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3. 수입 당사국이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결정한 경우, 그 상품이 이 장의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 그 특정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상품의 이후 수입에 대해서는 특혜관세대우의 중지 또는 거부권이 적용된다.

제 3.26 조
비당사국 송장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송장이 비당사국 영역에서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제 3.27 조
비밀유지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11조(비밀유지)는 이 장에 적용된다.

제 3.28 조
벌칙

각 당사국은 이 장과 관련된 자국 법과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형사상,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벌칙을 부과하는 조치를 유지한다.

제 3.29 조
불복청구 절차

이 장에 따른 원산지 결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재심 및 불복청구 권한은, 제4.8조(불복청구 절차)에 따라 상품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부여된다.

제 3.30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조정가치란 제3.3조제1항에 따라 계산된 상품의 가치를 말한다.

양식이란 정기적인 방류, 급식 또는 천적으로부터의 보호 등과 같이 생산 증대를 위한 사육 또는 성장 과정에 개입하여, 어류·연체동물·갑각류·그 밖의 수생 무척추 동물 및 수생 식물을 포함한 수생 생물을 알·치어·작은 물고기 및 유생동물 같은 종자로부터 기르는 것을 말한다.

운임보험료포함가격이란 상품을 수입 항구로 운송하는 데 발생하는 화물운송, 보험, 포장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수입 당시의 상품 가격을 말한다.

수출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출하는 인을 말한다.

본선인도가격이란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드는 운송 및 보험 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가치를 말한다.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란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징을 보유하여 동일한 종류와 상업적 품질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동일하거나 호환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란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 있는 지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세부 표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상품이란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재료란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 또는 소모되고 그 상품과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분류되는 상품을 말한다.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란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생산자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을 말한다.

생산이란 상품의 재배, 채굴, 수확, 어로, 번식, 사육, 덫사냥, 수렵, 제조, 조립 또는 분해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작업 또는 공정을 말한다. 그리고

가치란 관세 산정 또는 이 장의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또는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양허표 두주

1. 특정 호(4단위) 또는 소호(6단위)에 적용되는 특정 기준 또는 특정 기준들은 그 호 또는 소호 바로 옆에 규정된다.

2. 호 또는 소호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상 선택기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품이 선택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되면,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는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도록 요구된다. 세번변경의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된다.

4.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되고,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 호 또는 소호의 차원에서 특정 세번을 제외하도록 적시된 경우, 원산지 기준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그 제외된 특정 세번으로 분류된 재료가 원산지 재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당사국은 해석한다.

5. 이 양허표 내의 류 주해는, 특정한 제외가 있지 아니하는 한, 해당 류 또는 류들 내의 모든 호 또는 소호에 적용된다.

6.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는 이 부속서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친다.

7. 이 부속서의 목적상,

소호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 체계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호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류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2단위를 말한다.

8. 이 부속서 3열의 목적상,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란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2단위 수준에서 관세분류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란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4단위 수준에서 관세분류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란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6단위 수준에서 관세분류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완전생산기준이란 제3.2조의 의미 내에서 해당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될 것을 말한다.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이란 제3.3조에 따라 계산된 해당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이란 제3.3조에 따라 계산된 해당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집적법으로 30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1. 대한민국의 헌법상 위임 및 안보 이익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증진을 위한 양 당사국의 약속, 그리고 그 세계적 목표를 향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가 제21.4조(위원회 및 작업반)에 따라 설치된다.

2. 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6개월 이내에 회합하며, 그 후 매년 최소 2회 또는 상호 합의하는 대로 어느 때나 회합한다.

3. 위원회는 한반도의 여건을 검토하고,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4]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역외가공지역의 지리적 구역 내에서 원산지 최종상품에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 가치의 최대 한도를 설정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북한에 위치한 개성공업지구는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 중 하나로써 위원회에서 확인된다.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정보

1. 발급 번호
2. 수출자(연락처 포함)
3. 복수선적 포괄증명기간
4. 생산자(연락처 포함) *선택사항
5. 수입자(연락처 포함) *선택사항
6. 물품명세
7.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6단위)
8. 특혜 기준
9. 비고 *선택사항
10. 서약, 그리고
11. 원산지 증명서 작성자의 이름, 서명, 기업 또는 권한 있는 기관 및 연락처, 그리고 발급 일자

원산지 증명서 작성을 위한 설명

특혜관세대우 획득의 목적상,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또는 호주의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이 명료하고 충분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신고서 작성 시 수입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인쇄체로 쓰거나 타자로 친다. 추가 기재가 필요할 경우, 별지를 사용한다.

제1란: 증명서의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제2란: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제3란: 이 증명서가 특정 기간 동안 한국 또는 호주로 수입될 제6란에 기술된 상품의 복수선적을 다룰 경우, 이 란을 작성한다. "부터"는 증명서가 포괄 증명서의 적용을 받는 상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다(이 날은 이 증명서가 서명된 날보다 빠를 수 있다). "까지"는 포괄증명기간이 만료되는 날이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한 상품의 수입은 이 날짜 사이에 발생해야 한다. 날짜는 일/월/연도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4란: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이 란의 기재는 선택사항이다.

제5란: 수입자의 법적 이름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이 란의 기재는 선택사항이다.

제6란: 각 상품의 물품명세를 제공한다. 물품명세는 그 상품에 대한 송장의 물품명세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물품명세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증명서가 상품의 단일선적만을 적용하는 경우, 각 상품의 수량과 측정 단위(가능할 경우, 일련번호 포함), 그리고 상업 송장에 표시된 송장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배송주문

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상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 밖의 번호와 같은 다른 고유 참조 번호를 기재한다.

제7란: 제6란에 기재된 각 상품에 대하여,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기재한다.

제8란: 제6란에 기재된 각 상품에 대하여, 아래 기준(WO, PE, PSR 또는 기타) 중 적용가능한 기준을 기재한다. 원산지 규정은 이 장과 부속서 3-가에 포함되어 있다.

주: 특혜관세대우 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각 상품은 아래 기준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특혜 기준

WO: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경우

PE: 상품이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PSR: 상품이 1인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절차의 결과로서 부속서 3-가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타: 상품이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달리 부여받은 경우

제9란: 이 란은 제6란에 기재된 상품 또는 상품들이 사전심사를 받거나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송장이 발급되는 경우와 같이 이 증명서와 관련된 비고사항이 있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이 란의 기재는 선택사항이다.

제10란: 신고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이 문서상 정보는 사실이고 정확하며, 본인이 그러한 진술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본인은 이 문서상 또는 문서와 관련한 모든 허위진술이나 중대한 누락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이해한다.

본인은 이 증명서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유지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것에 동의하며, 이 증명서를 받은 모든 인에게 이 증명서의 정확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모든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에 동의한다.

그 상품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며 그 상품에 대하여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한다.

이 증명서는, 모든 첨부물을 포함하여, ____쪽으로 구성된다.

제11란: 이 란은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출자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자가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호주의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권한 있는 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은 이 란을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여야 하며, 권한 있는 기관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짜이어야 한다.

부속서 3-라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증명서 표준 서식

인쇄체로 쓰거나 타자로 친다.

1. 발급 번호:

2. 수출자 - 이름 및 연락처:	3. 복수선적의 포괄증명기간: 부터 (일/월/연도) (일/월/연도) 까지	
4. 생산자 - 이름 및 연락처(선택사항)	5. 수입자 - 이름 및 연락처(선택사항)	
6. 물품명세: (수량, 송장 번호 또는 적절한 경우 나든 고유 참조 번호 포함한다.)	7.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6 단위):	8. 특혜 기준:
9. 비고(선택사항):		
10. 서약: *본인은 다음을 보증한다.* *이 문서상 정보는 사실이고 정확하며, 본인이 그러한 진술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본인은 이 문서상 또는 문서와 관련한 모든 허위진술이나 중대한 누락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이해한다.* *본인은 이 증명서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유지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것에 동의하며, 이 증명서를 받은 모든 인에게 이 증명서의 정확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모든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에 동의한다.* *그 상품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며 그 상품에 대하여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한다.* *이 증명서는, 모든 첨부물을 포함하여, ___쪽으로 구성된다.*		
11. 서명:	기업 또는 권한 있는 기관:	
이름:	직위:	
날짜:	연락처:	

한-호주 FTA 협정 원산지 규정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제 1 부 산 동물, 동물성 생산품(제 01 류-제 05 류)	
01	**제 1 류 산 동물**	
0101	살아있는 말·당나귀·노새와 버새	
0101.2	말	
0101.21	순종 교배용 동물	완전생산기준
0101.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1.30	당나귀	완전생산기준
01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2	살아있는 소	
0102.2	축우	
0102.21	순종 교배용 동물	완전생산기준
0102.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2.3	버팔로	
0102.31	순종 교배용 동물	완전생산기준
0102.3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3	살아있는 돼지	
0103.10	순종 교배용 동물	완전생산기준
0103.9	기타	
0103.91	중량이 50 킬로그램 미만인 것	완전생산기준
0103.92	중량이 50 킬로그램 이상인 것	완전생산기준
0104	살아있는 면양과 산양	
0104.10	면양	완전생산기준
0104.20	산양	완전생산기준
0105	살아있는 가금류[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종의 것에 한한다)·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	
0105.1	중량이 185 그램 이하인 것	
0105.1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종의 것에 한한다)	완전생산기준
0105.12	칠면조	완전생산기준
0105.13	오리	완전생산기준
0105.14	거위	완전생산기준
0105.15	기니아새	완전생산기준
0105.9	기타	
0105.94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에 한한다)	완전생산기준
0105.9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6	기타의 산 동물	
0106.1	포유동물	
0106.11	영장류	완전생산기준
0106.12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매너티 및 듀공(바다소목의	완전생산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포유동물), 물개, 바다사자와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	
0106.13	낙타 및 기타 낙타과의 동물(카멜리대과)	완전생산기준
0106.14	토끼	완전생산기준
0106.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6.20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106.3	조류	
0106.31	맹금류	완전생산기준
0106.32	앵무류(패로트류 · 파라키트류 · 금강앵무류 및 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106.33	타조, 에뮤(드로마이어스 노바홀란디애)	완전생산기준
0106.3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6.4	곤충류	
0106.41	벌	완전생산기준
0106.4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6.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2	**제 2 류** **육과 식용 설육**	
0201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1.1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1.20	기타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1.30	뼈 없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2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2.1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2.20	기타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2.30	뼈 없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제외한다)
0203	돼지고기(신선 ·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3.1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203.1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3.12	넓적다리살 ·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3.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3.2	냉동한 것	
0203.2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3.22	넓적다리살 ·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3.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4	면양 또는 산양의 고기(신선 ·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4.1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4.2	기타 면양의 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4.2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4.22	기타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6.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6.30	돼지의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6.4	돼지의 것(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6.41	간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6.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6.80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6.90	기타(냉동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	육과 식용설육(제 0105 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 ·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7.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종의 것에 한한다)의 것	
0207.11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12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13	절단육 및 설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204.23	뼈 없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4.3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4.4	기타 면양의 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4.4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4.42	기타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4.43	뼈 없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4.50	산양의 고기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5.00	말 · 당나귀 · 노새 또는 버새의 고기(신선 ·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6	식용 설육(屑肉)(소 · 돼지 · 면양 · 산양 · 말 · 당나귀 · 노새 또는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 ·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6.10	소의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6.2	소의 것(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6.21	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6.22	간(肝)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207.5	거위의 것	
0207.51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52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53	지방간(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54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55	기타(냉동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60	기니아새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8	기타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8.10	토끼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8.30	영장류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8.40	고래 ·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 및 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 바다사자와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8.5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207.14	절단육 및 설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2	칠면조의 것	
0207.24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25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26	절단육 및 설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27	절단육 및 설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4	오리의 것	
0207.41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42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43	지방간(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44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45	기타(냉동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제외한다)
0210.92	고래 ·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 및 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 바다사자와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10.93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10.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3	**제 3 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0301	활어	
0301.1	관상용의 것	
0301.11	민물의 것	완전생산기준
0301.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1.9	기타의 활어	
0301.91	송어(살모 트루타 · 앙코링쿠스 미키스 · 앙코링쿠스 클라키 ·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 앙코링쿠스 길래 ·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완전생산기준
0301.92	뱀장어(앵귈라종)	완전생산기준
0301.93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완전생산기준
0301.94	대서양 참다랑어 및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터너스 오리엔탈리스)	완전생산기준
0301.95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완전생산기준
0301.9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 0304 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0302.1	연어류(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2.11	송어(살모 트루타 · 앙코링쿠스 미키스 · 앙코링쿠스 클라키 ·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 앙코링쿠스 길래 ·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완전생산기준
0302.13	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넬카·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앙코링쿠스 게타·앙코링쿠스 챠비챠·앙코링쿠스 키수츠·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완전생산기준
0302.14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완전생산기준
0302.19	기타	완전생산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208.60	낙타 및 기타 낙타과(카멜리대과)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8.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9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을 빼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0209.10	돼지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9.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10	육과 식용 설육(염장 · 염수장 · 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0210.1	돼지고기	
0210.11	넓적다리살 ·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10.12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10.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10.20	쇠고기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10.9	기타(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을 포함한다)	
0210.91	영장류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302.55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완전생산기준
0302.56	블루 화이팅스(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 ·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	완전생산기준
0302.5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7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 메기(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타루러스종) ·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 뱀장어(앵귈라종)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및 가물치(카나종)(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2.71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완전생산기준
0302.72	메기(판가시우스종 · 실루러스종 · 클라리아스종 · 익타루러스종)	완전생산기준
0302.73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 씨리누스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완전생산기준
0302.74	뱀장어(앵귈라종)	완전생산기준
0302.7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8	기타 어류(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0302.81	곱상어와 기타 상어	완전생산기준
0302.82	가오리와 홍어(라지대과)	완전생산기준
0302.83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	완전생산기준
0302.84	농어(디센트라르쿠스종)	완전생산기준
0302.85	돔(스파리대과)	완전생산기준
0302.8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90	간과 어란	완전생산기준
0303	냉동어류(제 0304 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0303.1	연어류(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3.11	소크아이 연어(홍연어)(앙코링쿠스 넬카)	완전생산기준
0303.12	기타의 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 앙코링쿠스 게타 · 앙코링쿠스 챠비챠 · 앙코링쿠스 키수츠 · 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완전생산기준
0303.13	대서양연어(살모 살라)와 다뉴브연어(후코 후코)	완전생산기준
0303.14	송어(살모 트루타·앙코링쿠스 미키스 · 앙코링쿠스 클라키 ·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 앙코링쿠스 길래 ·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완전생산기준
0303.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3.2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 메기(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타루러스종) ·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 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 뱀장어(앵귈라종)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및 가물치(카나종)(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302.2	넙치류(플루로넥티대과 · 바디대과 · 사이노글로시대과 · 솔레이대과 · 스코프탈미대과 및 시타리대과)(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2.21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 ·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 ·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완전생산기준
0302.22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	완전생산기준
0302.23	서대(솔레아종)	완전생산기준
0302.24	터벗(프세타 맥시마)	완전생산기준
0302.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3	다랑어(터너스속의 것에 한한다)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2.31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	완전생산기준
0302.32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완전생산기준
0302.33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	완전생산기준
0302.34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완전생산기준
0302.35	대서양 참다랑어 및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터너스 오리엔탈리스)	완전생산기준
0302.36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완전생산기준
0302.3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4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 멸치(엔그라울리스종) ·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사르디노프스종) ·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 · 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버 자포니쿠스) ·전갱이(트라커러스종) ·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 및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2.41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완전생산기준
0302.42	멸치(엔그라울리스 종)	완전생산기준
0302.43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사르디노프스종) ·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 · 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완전생산기준
0302.44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버 자포니쿠스)	완전생산기준
0302.45	전갱이(트라커러스종)	완전생산기준
0302.46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	완전생산기준
0302.47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완전생산기준
0302.5	브레그마세로티대과 · 유클리티대과 · 가디대과 · 마크로우리대과 · 멜라노니대과 · 메르루치대과 · 모리대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과의 어류(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2.51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완전생산기준
0302.52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완전생산기준
0302.53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완전생산기준
0302.54	민대구(메루키우스종 · 유르피키스종)	완전생산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무라에놀레피디대과의 어류(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3.63	대구(가두스 모르화 · 가두스 오각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완전생산기준
0303.64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완전생산기준
0303.65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완전생산기준
0303.66	민대구(메루키우스종 · 유르피키스종)	완전생산기준
0303.67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완전생산기준
0303.68	블루 화이팅스(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 ·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	완전생산기준
0303.6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3.8	기타 어류(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3.81	곱상어와 기타 상어	완전생산기준
0303.82	가오리와 홍어(라지대과)	완전생산기준
0303.83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	완전생산기준
0303.84	농어(디센트라쿠스종)	완전생산기준
0303.8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3.90	간과 어란	완전생산기준
0304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304.3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 메기(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타루러스종) ·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 뱀장어(앵귈라종)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및 가물치(카나종)의 신선 또는 냉장한 피레트	
0304.31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32	메기(판가시우스종 · 실루러스종 · 클라리아스종 · 익타루러스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33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4	기타 어류의 신선 또는 냉장한 피레트	
0304.41	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넬카 ·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 앙코링쿠스 게타 · 앙코링쿠스 챠비챠 · 앙코링쿠스 키수츠 · 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42	송어(살모 트루타 · 앙코링쿠스 미키스 · 앙코링쿠스 클라키 ·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 앙코링쿠스 길래 ·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43	넙치류(플루로넥티대과 · 바디대과 · 사이노글로시대과 · 솔레이대과 · 스코프탈미대과 및 시타리대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303.23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완전생산기준
0303.24	메기(판가시우스종 · 실루러스종 · 클라리아스종 · 익타루러스종)	완전생산기준
0303.25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 씨리누스 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완전생산기준
0303.26	뱀장어(앵귈라종)	완전생산기준
0303.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3.3	넙치류(플루로넥티대과 · 바디대과 · 사이노글로시대과 · 솔레이대과 · 스코프탈미대과 및 시타리대과)(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3.31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 ·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 ·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완전생산기준
0303.32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	완전생산기준
0303.33	서대(솔레아종)	완전생산기준
0303.34	터벗(프세타 맥시마)	완전생산기준
0303.3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3.4	다랑어(터너스속의 것에 한한다)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3.41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	완전생산기준
0303.42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완전생산기준
0303.43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	완전생산기준
0303.44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완전생산기준
0303.45	대서양 참다랑어 및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 터너스 오리엔탈리스)	완전생산기준
0303.46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완전생산기준
0303.4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3.5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사르디노프스종) ·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 · 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버 자포니쿠스) · 전갱이(트라커러스종) ·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3.51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 클루페아 팔라시)	완전생산기준
0303.53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사르디노프스종) ·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 · 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완전생산기준
0303.54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 · 스콤버 자포니쿠스)	완전생산기준
0303.55	전갱이(트라커러스종)	완전생산기준
0303.56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	완전생산기준
0303.57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완전생산기준
0303.6	브레그마세로티대과 · 유클리티대과 · 가디대과 · 마크로우리대과 · 멜라노니대과 · 메르루치대과 · 모리대과 및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 멜라노니대과 · 메르루치대과 · 모리대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과의 어류의 냉동한 피레트	
0304.71	대구(가두스 모르화 · 가두스 오각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72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73	검정대구(플라치우스 비렌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74	민대구(메루키우스종 · 유르피키스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75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7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8	기타 어류의 냉동한 피레트	
0304.81	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넬카 ·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 앙코링쿠스 게타 · 앙코링쿠스 챠비챠 · 앙코링쿠스 키수츠 · 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82	송어(살모 트루타 · 앙코링쿠스 미키스 · 앙코링쿠스 클라키 ·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 앙코링쿠스 길래 ·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83	넙치류(플루로넥티대과 · 바디대과 · 사이노글로시대과 · 솔레이대과 · 스코프탈미대과 및 시타리대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84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85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86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 클루페아 팔라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87	다랑어(터너스속의 것에 한한다)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8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9	기타(냉동한 것에 한한다)	
0304.91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92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93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 메기(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타루러스종) ·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304.44	브레그마세로티대과 · 유클리티대과 · 가디대과 · 마크로우리대과 · 멜라노니대과 · 메르루치대과 · 모리대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과의 어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45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46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5	기타,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304.51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 메기(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타루러스종) ·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 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 뱀장어(앵귈라종)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및 가물치(카나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52	연어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53	브레그마세로티대과 · 유클리티대과 · 가디대과 · 마크로우리대과 · 멜라노니대과 · 메르루치대과 · 모리대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과의 어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54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55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5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6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 메기(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타루러스종) ·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 뱀장어(앵귈라종)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및 가물치(카나종)의 냉동한 피레트	
0304.61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62	메기(판가시우스종 · 실루러스종 · 클라리아스종 · 익타루러스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63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6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7	브레그마세로티대과 · 유클리티대과 · 가디대과 · 마크로우리대과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 뱀장어(앵귈라종)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및 가물치(카나종)	
0304.94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95	브레그마세로티대과 · 유클리티대과 · 가디대과 · 마크로우리대과 · 멜라노니대과 · 메르루치대과 · 모리대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과의 어류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를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	건조 · 염장 또는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이전 또는 훈제과정 동안에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어류의 분 · 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305.10	어류의 분 · 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20	어류의 간과 어란(건조 · 훈제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3	어류의 피레트(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305.31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 메기(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타루러스종) ·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 뱀장어(앵귈라종)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및 가물치(카나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32	브레그마세로티대과 · 유클리티대과 · 가디대과 · 마크로우리대과 · 멜라노니대과 · 메르루치대과 · 모리대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과의 어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4	훈제한 어류(피레트를 포함하며, 식용 어류설육을 제외한다)	
0305.41	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넬카 ·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 앙코링쿠스 케타 · 앙코링쿠스 챠비챠 · 앙코링쿠스 키수츠 · 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42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 클루페아 팔라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43	송어(살모 트루타 · 앙코링쿠스 미키스 · 앙코링쿠스 클라키 ·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 앙코링쿠스 길래 ·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44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 메기(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타루러스종) ·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 뱀장어(앵귈라종)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및 가물치(카나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5	건조한 어류(식용 어류 설육을 제외한 것으로서 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305.51	대구(가두스 모르화 · 가두스 오각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5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6	건조 또는 훈제하지 않은 염장한 어류 및 염수장한 어류(식용 어류 설육을 제외한다)	
0305.61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 클루페아 팔라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62	대구(가두스 모르화 · 가두스 오각 · 가두스 마르크로세팔루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63	멸치(엔그로리스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64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 메기(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타루러스종) ·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 뱀장어(앵귈라종)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및 가물치(카나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6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7	어류의 지느러미 · 머리 · 꼬리 · 위 및 기타 식용 어류 설육	
0305.71	상어 지느러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72	어류의 머리 · 꼬리 · 위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7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산 것과 신선 · 냉장 · 냉동 · 건조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와 훈제과정 이전 또는 훈제과정 동안에 조리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 · 냉동 · 건조 ·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갑각류의 분 · 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306.1	냉동한 것	
0306.11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 · 파누리루스종 · 자수스종)	완전생산기준
0306.12	바닷가재(호마루스종)	완전생산기준
0306.14	게	완전생산기준
0306.15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	완전생산기준
0306.16	냉수성 새우류(판달러스종, 크란곤 크란곤)	완전생산기준
0306.17	기타의 새우류	완전생산기준
0306.19	기타[분 · 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6.2	냉동하지 아니한 것	
0306.21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 · 파누리루스종 · 자수스종)	완전생산기준
0306.22	바닷가재(호마루스종)	완전생산기준
0306.24	게	완전생산기준
0306.25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6.26	냉수성 새우류(판달러스종, 크란곤 크란곤)	완전생산기준
0306.27	기타의 새우류	완전생산기준
0306.29	기타[분 · 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산 것과 신선· 냉장 · 냉동 · 건조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훈제한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와 훈제과정 이전 또는 훈제과정 동안에 조리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연체동물의 분 · 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307.1	굴	
0307.11	산 것 ·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7.2	가리비과의 조개(펙텐 · 클라미스 또는 프라코펙텐속의 것으로서 여왕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0307.21	산 것 ·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7.3	홍합(미틸루스종 · 페르나종)	
0307.31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3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7.4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 · 로시아 마크로소마 · 세피올라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종 · 로리고종 · 노토토다루스종 · 세피오투디스종)	
0307.41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4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7.5	문어(옥토퍼스종)	
0307.51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5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7.60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0307.7	클램, 새조개 및 피조개(아르치대과 · 아르크티치대과 · 카르디대과 · 도나치대과 · 히아텔리대과 · 마르크트리대과 · 메소데스마티대과 · 마이이대과 · 세멜리대과 · 솔레쿠르티대과 · 솔레니대과 · 트리다크니대과 및 베네리대과)	
0307.71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7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7.8	전복(할리오티스종)	
0307.81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8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7.9	기타[분 · 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307.91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8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 · 냉장 · 냉동 · 건조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훈제과정 이전 또는 훈제과정 동안에 조리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한다)의 분 · 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0308.1	해삼(스티코푸스 자포니쿠스, 홀로투리오이대과)	
0308.11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8.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8.2	성게(스트론길로센트로투스종 · 파라센트로투스 리비두스 · 록세치누스 알버스 · 에치치누스 에스쿨렌투스)	
0308.21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8.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8.30	해파리(로필레마종)	완전생산기준
0308.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4	**제 4 류 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401.10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 퍼센트 이하인 것	완전생산기준
0401.20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 퍼센트를 초과하고 6 퍼센트 이하인 것	완전생산기준
0401.40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 퍼센트를 초과하고 10 퍼센트 이하인 것	완전생산기준
0401.50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완전생산기준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0402.10	분상·입상 또는 기타 고체상태인 것으로서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5 퍼센트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1901.9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402.2	분상·입상 또는 기타 고체상태인 것으로서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0402.21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1901.9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402.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1901.9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402.9	기타	
0402.91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1901.9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402.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1901.9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403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실 또는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03.10	요구르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소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호 제 1901.9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4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1901.9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404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404.10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1901.9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4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1901.9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405	버터 및 기타의 지와 유(밀크에서 얻어진 것에 한한다), 데어리 스프레드	
0405.10	버터	2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1901.9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405.20	데어리 스프레드	2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1901.9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405.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1901.9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406	치즈와 커드	
0406.10	신선한(숙성되지 아니한 것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	2 단위 세번변경기준(소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409.00	천연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1901.9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410.00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5	**제 5 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0501.00	인모(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세척한 것인지 또는 세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그 웨이스트	완전생산기준
0502	돼지털·멧돼지털·오소리털 및 기타 브러시 제조용의 수모와 그 웨이스트	
0502.10	돼지털·멧돼지털 및 그 웨이스트	완전생산기준
05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504.00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 및 제 02 류는 제외한다)
0505	우모 또는 솜털이 붙은 새의 피와 기타 부분, 우모와 우모의 부분(가장자리가 정리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새의 솜털(청정, 소독 또는 보존을 위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우모 및 우모의 부분의 가루와 웨이스트	
0505.10	솜털, 충전재용 깃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505.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506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06.10	골소와 뼈(산처리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 및 제 02 류는 제외한다)
0506.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 및 제 02 류는 제외한다)
0507	아이보리·귀갑·고래수염과 그 털·뿔·사슴뿔·발굽·발톱 및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호 제 1901.9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406.20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2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1901.9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406.30	가공치즈(갈았거나 분상의 것을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1901.9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406.40	블루바인 치즈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로 생산된 바인을 함유한 기타 치즈	2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1901.9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406.90	기타 치즈	2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1901.9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407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처리 또는 조리한 것에 한한다)	
0407.1	부화용 수정란	
0407.1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에 한한다)의 것	완전생산기준
0407.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7.2	기타의 신선란	
0407.2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에 한한다)의 것	완전생산기준
0407.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7.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8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찌거나 삶은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 또는 기타의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하며,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08.1	난황	
0408.11	건조한 것	완전생산기준
0408.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8.9	기타	
0408.91	건조한 것	완전생산기준
0408.99	기타	완전생산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부리(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07.10	아이보리, 아이보리의 분과 웨이스트	완전생산기준
0507.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508.00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및 연체동물·갑각류 또는 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와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완전생산기준
0510.00	용연향·해리향·시빗과 사향, 캔대리디즈, 담즙(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의약품 제조용의 선(腺)이나 기타 동물성 생산품(신선·냉장·냉동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511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제 1 류 또는 제 3 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0511.10	소의 정액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511.9	기타	
0511.91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생산품, 제 3 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511.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 및 제 02 류는 제외한다)
	제 2 부 식물성 생산품(제 6 류-제 14 류)	
06	**제 6 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잎**	
0601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의 것,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제 1212 호의 뿌리를 제외한다)	
0601.10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의 것	완전생산기준
0601.20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경으로서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	완전생산기준
0602	기타의 산 식물(뿌리를 포함한다)·삽수 및 접수, 버섯의 종균	
0602.10	뿌리가 없는 삽수와 접수	완전생산기준
0602.20	수목 및 관목(식용의 과실 또는 견과류의 것으로서 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완전생산기준
0602.30	진달래 속의 식물 및 철쭉(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완전생산기준
0602.40	장미(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완전생산기준
06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603	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603.1	신선한 것	
0603.11	장미	완전생산기준
0603.12	카네이션	완전생산기준
0603.13	난	완전생산기준
0603.14	국화	완전생산기준
0603.15	백합(릴리움종)	완전생산기준
0603.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603.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604	식물의 잎·가지 및 기타의 부분(꽃 또는 꽃봉오리가 없는 것에 한한다)과 풀·이끼 및 지의(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종류의 상품에 한한다)	
0604.20	신선한 것	완전생산기준
060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	**제 7 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0701	감자(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1.10	종자용	완전생산기준
07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2.00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완전생산기준
0703	양파·쪽파·마늘·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3.10	양파와 쪽파	완전생산기준
0703.20	마늘	완전생산기준
0703.90	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	완전생산기준
0704	양배추·꽃양배추·구경양배추·케일 및 이와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4.10	꽃양배추 및 결구된 브로콜리	완전생산기준
0704.20	방울다다기 양배추	완전생산기준
070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5	상추(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종)(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5.1	상추	
0705.11	결구상추	완전생산기준
0705.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5.2	치커리	
0705.21	위트루우프치커리(시코리엄 인티버스변종 포리오섬)	완전생산기준
0705.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6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仙茅)·셀러리악·무 및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6.10	당근과 순무	완전생산기준
0706.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7.00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완전생산기준
0708	채두류(꼬투리 유무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8.10	완두(피섬 새티범)	완전생산기준
0708.20	콩(비그나종, 파세러스종)	완전생산기준
0708.90	기타 채두류	완전생산기준
0709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9.20	아스파라거스	완전생산기준
0709.30	가지(에그플랜트)	완전생산기준
0709.40	셀러리(셀러리악을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0709.5	버섯과 송로	
0709.51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완전생산기준
0709.5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9.60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완전생산기준
0709.70	시금치류	완전생산기준
0709.9	기타	
0709.91	구상의 양엉겅퀴	완전생산기준
0709.92	올리브	완전생산기준
0709.93	호박류(쿠쿠르비타종)	완전생산기준
0709.9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찌거나 삶아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	
0710.10	감자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0.2	채두류(꼬투리 유무를 불문한다)	
0710.21	완두(피섬 새티범)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0.22	콩(비그나종, 파세러스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0.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0.30	시금치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0.40	스위트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0.80	기타 채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0.90	채소류의 혼합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1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711.20	올리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1.40	오이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1.5	버섯과 송로	
0711.51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1.5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1.90	기타 채소, 채소류의 혼합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2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0712.20	양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2.3	버섯, 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종), 젤리균류(트레멜라종) 및 송로	
0712.31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2.32	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2.33	젤리균류(트레멜라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2.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2.90	기타 채소, 채소류의 혼합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3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713.10	완두(피섬새티범)	완전생산기준
0713.20	이집트 콩(가반조스)	완전생산기준
0713.3	콩(비그나종, 파세러스종)	
0713.31	녹두[비그나 멍고(엘) 헤파 또는 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윌크젝종]	완전생산기준
0713.32	팥(아주기)(파세러스 또는 비그나 앵구라리스)	완전생산기준
0713.33	강낭콩(흰 완두콩을 포함한다)(파세러스 불가리스)	완전생산기준
0713.34	밤바라콩(비그나 서브터라니아 또는 보안드제이아 서브터라니아)	완전생산기준
0713.35	동부콩(비그나 운구이쿨라타)	완전생산기준
0713.3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3.40	렌즈콩	완전생산기준
0713.50	잠두(비시아 파바변종 메이저) 및 말먹이용의 잠두(비시아 파바변종 에퀴나와 비시아 파바변종 마이너)	완전생산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713.60	비둘기콩(카자누스 카잔)	완전생산기준
0713.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4	매니옥·칡뿌리·살렙·국아·고구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자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냉동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사고야자의 수	
0714.10	매니옥(카사바)	완전생산기준
0714.20	고구마	완전생산기준
0714.30	얌(디오스코레아종)	완전생산기준
0714.40	토란(콜로카시아종)	완전생산기준
0714.50	아메리카토란(크산토소마종)	완전생산기준
071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	**제 8 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0801	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01.1	코코넛	
0801.11	말린 것	완전생산기준
0801.12	내피를 탈각하지 아니한 것(내과피)	완전생산기준
0801.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1.2	브라질넛	
0801.21	탈각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1.22	탈각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1.3	캐슈넛	
0801.31	탈각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1.32	탈각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02.1	아몬드	
0802.11	탈각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12	탈각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2	헤즐너트 또는 필버트(코리루스종)	
0802.21	탈각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22	탈각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3	호도	
0802.31	탈각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32	탈각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4	밤(카스타네아종)	
0802.41	탈각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42	탈각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5	피스타치오	
0802.51	탈각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52	탈각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6	마카다미아 너트	
0802.61	탈각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62	탈각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70	콜라 너트(콜라종)	완전생산기준
0802.80	빈랑자	완전생산기준
08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3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3.10	플랜틴	완전생산기준
0803.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4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구아버·망고 및 망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4.10	대추야자	완전생산기준
0804.20	무화과	완전생산기준
0804.30	파인애플	완전생산기준
0804.40	아보카도	완전생산기준
0804.50	구아버, 망고 및 망고스틴	완전생산기준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5.10	오렌지	완전생산기준
0805.20	맨더린(탄제린 및 세트수머를 포함한다), 클레멘타인·윌킹 및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완전생산기준
0805.40	그레이프프루트(포멜로우를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805.50	레몬(시트러스 리몬 및 시트러스 리머늄)과 라임(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 및 시트러스 라티폴리아)	완전생산기준
080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6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6.10	신선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6.20	건조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7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파파야)(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7.1	멜론(수박을 포함한다)	
0807.11	수박	완전생산기준
0807.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7.20	포포우(파파야)	완전생산기준
0808	사과·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8.10	사과	완전생산기준
0808.30	배	완전생산기준
0808.40	마르멜로	완전생산기준
0809	살구·버찌·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자두 및 슬로우(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9.10	살구	완전생산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커피·차·마테 및 향신료	
0901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커피의 각과 피,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0901.1	커피(볶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901.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901.12	카페인을 제거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1.2	커피(볶은 것에 한한다)	
0901.2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1.22	카페인을 제거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2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902.10	녹차(발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내용물의 무게가 3 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2.20	기타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2.30	홍차(발효차)와 부분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 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2.40	기타 홍차(발효차)와 기타 부분발효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3.00	마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4	후추(파이퍼속의 것에 한한다), 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0904.1	후추	
0904.11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4.12	파쇄 또는 분쇄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4.2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0904.21	건조한 것(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0709.60 호 또는 제 0710.8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904.22	파쇄 또는 분쇄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0709.60 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809.2	버찌	
0809.21	신버찌(프루너스 제라서스)	완전생산기준
0809.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9.30	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809.40	자두와 슬로우	완전생산기준
0810	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0810.10	초본류 딸기	완전생산기준
0810.20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 및 로간베리	완전생산기준
0810.30	흑색, 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와 구즈베리	완전생산기준
0810.40	크랜베리·빌베리와 기타 박시니엄속의 과실	완전생산기준
0810.50	키위프루트	완전생산기준
0810.60	두리언	완전생산기준
0810.70	감	완전생산기준
0810.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11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찌거나 삶아서 조리한 것에 한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811.10	초본류 딸기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811.20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로간베리와 흑색·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 및 구즈베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81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812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812.10	버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81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813	건조한 과실(제 0801 호 부터 제 0806 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3.10	살구	완전생산기준
0813.20	프룬	완전생산기준
0813.30	사과	완전생산기준
0813.40	기타 과실	완전생산기준
0813.50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814.00	감귤류의 껍질 또는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 냉동, 건조 또는 염수·유황수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	**제 9 류**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제 0710.8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905	바닐라	
0905.10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5.20	파쇄 또는 분쇄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0906.1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0906.11	계피(신나모멈 제이라니쿰 블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6.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6.20	파쇄 또는 분쇄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7	정향[과실, 꽃 및 화경(花莖)에 한한다]	
0907.10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907.20	파쇄 또는 분쇄한 것	완전생산기준
0908	육두구, 메이스 및 소두구	
0908.1	육두구	
0908.11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908.12	파쇄 또는 분쇄한 것	완전생산기준
0908.2	메이스	
0908.21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908.22	파쇄 또는 분쇄한 것	완전생산기준
0908.3	소두구	
0908.31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908.32	파쇄 또는 분쇄한 것	완전생산기준
0909	아니스 · 대회향 · 회향 · 코리앤더 · 커민 또는 캐러웨이의 씨, 주니퍼의 열매	
0909.2	코리앤더의 씨	
0909.21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909.22	파쇄 또는 분쇄한 것	완전생산기준
0909.3	커민의 씨	
0909.31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909.32	파쇄 또는 분쇄한 것	완전생산기준
0909.6	아니스, 대회향, 캐러웨이 또는 회향의 씨, 주니퍼의 열매	
0909.61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909.62	파쇄 또는 분쇄한 것	완전생산기준
0910	생강 · 샤프란 · 심황(강황) · 타임 · 월계수의 잎 · 카레 및 기타 향신료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910.1	생강	
0910.11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910.12	파쇄 또는 분쇄한 것	완전생산기준
0910.20	샤프란	완전생산기준
0910.30	심황(강황)	완전생산기준
0910.9	기타 향신료	
0910.91	혼합물(제 9 류의 주 제 1 호나목의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10.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0	**제 10 류 곡물**	
1001	밀과 메슬린	
1001.1	듀럼종의 밀	
1001.11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1.19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1.9	기타	
1001.91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1.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2	호밀	
1002.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3	보리	
1003.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3.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4	귀리	
1004.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5	옥수수	
1005.10	종자용	완전생산기준
100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6	쌀	
1006.10	벼	완전생산기준
1006.20	현미	완전생산기준
1006.30	정미(연마 또는 광택 여부를 불문한다)	완전생산기준
1006.40	쇄미	완전생산기준
1007	수수	
1007.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7.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8	메밀 · 밀리트 및 카나리시드, 기타의 곡물	
1008.10	메밀	완전생산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1008.2	밀리트	
1008.21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8.29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8.30	카나리시드	완전생산기준
1008.40	포니오(디지타리아종)	완전생산기준
1008.50	퀴노아(체노포디움 퀴노아)	완전생산기준
1008.60	라이밀	완전생산기준
1008.90	기타 곡물	완전생산기준
11	**제 11 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	
1101.00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2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	
1102.20	옥수수가루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3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1103.1	분쇄물 및 조분	
1103.11	밀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3.13	옥수수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3.19	기타 곡물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3.20	펠리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4	기타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 1006 호의 쌀을 제외한다)],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1104.1	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	
1104.12	귀리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4.19	기타 곡물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4.2	기타 가공곡물(예: 껍질을 벗긴것・진주상의 것・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에 한한다)	
1104.22	귀리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4.23	옥수수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4.29	기타 곡물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4.30	곡물의 배아(원상의 것・압축한 것・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5	감자의 분・조분・분말・플레이크・입 및 펠리트	
1105.10	분・조분과 분말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7 류는 제외한다)
1105.20	플레이크・입 및 펠리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7 류는 제외한다)
1106	건조한 채두류(제 0713 호의 것), 사고・뿌리 또는 괴경(제 0714 호의 것) 또는 제 8 류 물품의 분・조분과 분말	
1106.10	건조한 채두류의 것(제 0713 호의 것에 한한다)	2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제 07 류 및 제 08 류는 제외한다)
1106.20	사고·뿌리 또는 괴경의 것(제 0714 호의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7 류 및 제 08 류는 제외한다)
1106.30	제 8 류 물품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7 류 및 제 08 류는 제외한다)
1107	맥아(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107.10	볶지 아니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7.20	볶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8	전분, 이눌린	
1108.1	전분	
1108.11	밀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7 류 및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8.12	옥수수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7 류 및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8.13	감자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7 류 및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8.14	매니옥(카사바)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7 류 및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8.19	기타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7 류 및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8.20	이눌린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7 류 및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9.00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7 류 및 제 10 류는 제외한다)
12	**제 12 류 채유용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201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1.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2	낙화생(볶거나 기타 조리를 한 것을 제외하며, 탈각 또는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2.30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2.4	기타	
1202.41	탈각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1202.42	탈각한 것(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203.00	코프라	완전생산기준
1204.00	아마인(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완전생산기준
1205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5.10	저에루크산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	완전생산기준
120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6.00	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완전생산기준
1207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7.10	팜넛과 핵	완전생산기준
1207.2	면실	
1207.21	종자	완전생산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1207.2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7.30	피마자	완전생산기준
1207.40	참깨씨	완전생산기준
1207.50	겨자씨	완전생산기준
1207.60	잇꽃(카르타무스 틴크토리우스)씨	완전생산기준
1207.70	멜론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7.9	기타	
1207.91	양귀비씨	완전생산기준
1207.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8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의 분과 조분을 제외한다)	
1208.10	대두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208.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209	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	
1209.10	사탕무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	사료용 식물의 종자	
1209.21	루우산(알팔파)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2	클로버(트리폴리엄종)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3	페스큐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4	켄터키블루그래스(포아프래텐시스 엘)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5	라이그래스 종자(로오리엄 멀티플로럼 램, 로오리엄 페레네 엘)	완전생산기준
1209.2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9.30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9	기타	
1209.91	채소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10	호프(신선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 분상의 것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루플린	
1210.10	호프(분쇄한 것, 분상의 것 또는 펠리트상의 것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210.20	호프(분쇄한 것, 분상의 것 또는 펠리트상의 것에 한한다), 루플린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211	주로 향료용·의약용·살충용·살균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11.20	인삼	완전생산기준
1211.30	코카잎	완전생산기준
1211.40	양귀비줄기	완전생산기준
121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1212	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 기타 조류,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냉장·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아니한 시코리엄 인티버스 새티범 변종의 치커리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212.2	해초류와 기타 조류	
1212.21	식용에 적합한 것	완전생산기준
1212.2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12.9	기타	
1212.91	사탕무	완전생산기준
1212.92	로우커스트두(캐롭)	완전생산기준
1212.93	사탕수수	완전생산기준
1212.94	치커리뿌리	완전생산기준
1212.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13.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압착 또는 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완전생산기준
1214	스위드·맹골드·사료용의 근채류·건초·루우산(알팔파)·클로버·샌포인·사료용 케일·루핀·베치 및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14.10	루우산(알팔파)의 조분과 펠리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21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	**제 13 류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수액과 엑스**	
1301	락과 천연검·수지·검수지 및 올레오레진(예: 발삼)	
1301.20	아라비아 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 및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302.1	식물성 수액과 엑스	
1302.11	아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12	감초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13	호프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1302.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211.20 호는 제외한다)
1302.20	펙틴질 · 펙티닌산염 및 펙틴산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3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302.31	한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32	로우커스트두 · 로우커스트두의 씨 또는 구아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4	**제 14 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1401	편조물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대나무 · 등나무 · 갈대 · 골풀 · 양버드나무 · 라피아, 청정 · 표백 또는 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수피)	
1401.10	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401.20	등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4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404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1404.20	면린터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4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 부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 납	
15	**제 15 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 납**	
1501	돈지(라드를 포함한다)와 가금지(제 0209 호 또는 제 15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1.10	라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1.20	기타의 돈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1502	소 · 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 15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2.10	탤로우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3.00	라드스테아린, 라드유, 올레오스테아린, 올레오유 및 탤로우유로서 유화 · 혼합 또는 기타의 조제를 하지 아니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4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4.10	어류의 간유와 그 분획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4.20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간유를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4.30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5.00	울그리스와 이로부터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6.00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7.10	조유[검(gum)질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7.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8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8.10	조유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8.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9.10	버어진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9.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0.00	기타 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만 얻어진 것으로서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하며, 이들의 유 또는 그 분획물이 제 1509 호의 유 또는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5.1	아마인유와 그 분획물	
1515.11	조유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5.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5.2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1515.21	조유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5.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5.30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5.50	참기름과 그 분획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5.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6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리에스텔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6.10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6.20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7	마가린,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기타 유지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 1516 호의 식용유지 또는 그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	
1517.10	마가린(액상마가린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8.00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기타 화학적 변성을 한 것에 한하며, 제 1516 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식물성 유지 또는 이 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20.00	글리세롤(조상의 것에 한한다), 글리세롤 수 및 글리세롤 폐액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21	식물성 납(트리글리세라이드를 제외한다)·밀랍·기타 곤충납과 경납(정제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1.10	조유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2	해바라기씨유·잇꽃유 또는 면실유 및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2.1	해바라기씨유 또는 잇꽃유와 그 분획물	
1512.11	조유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2.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2.2	면실유와 그 분획물	
1512.21	조유(고시폴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2.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3	야자(코프라)유,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3.1	야자(코프라)유와 그 분획물	
1513.11	조유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3.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3.2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	
1513.21	조유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3.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4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또는 겨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4.1	저에루크산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와 그 분획물	
1514.11	조유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4.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4.9	기타	
1514.91	조유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4.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5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바유를 포함한다)와 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1521.10	식물성 납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2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22.00	데그라스, 지방성 물질 또는 동식물성 납의 처리 시에 생기는 잔유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4 부 조제식료품, 음료·알코올·식초,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제 16 류-제 24 류)	
16	**제 16 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601.00	소시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 이들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 및 제 02 류는 제외한다)
1602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 또는 피	
1602.10	균질화한 조제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 및 제 02 류는 제외한다)
1602.20	동물간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 및 제 02 류는 제외한다)
1602.3	가금류의 것(제 0105 호의 것에 한한다)	
1602.31	칠면조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 및 제 02 류는 제외한다)
1602.32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에 한한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 및 제 02 류는 제외한다)
1602.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 및 제 02 류는 제외한다)
1602.4	돼지의 것	
1602.41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 및 제 02 류는 제외한다)
1602.42	어깨살과 그 절단육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 내지 제 02 류는 제외한다)
1602.49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 및 제 02 류는 제외한다)
1602.50	소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 및 제 02 류는 제외한다)
1602.90	기타(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 및 제 02 류는 제외한다)
1603.00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즙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 및 제 02 류는 제외한다)
16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1604.1	어류(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에 한하며, 잘게 다진 것을 제외한다)	
1604.11	연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4.12	청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4.13	정어리·사르디넬라 및 브리스링 또는 스프랫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4.14	다랑어·가다랑어 및 버니토우(사르다종)	2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1604.15	고등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4.16	멸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4.17	뱀장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4.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4.2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4.3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	
1604.31	캐비아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4.32	캐비아 대용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1605.10	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2	새우류	
1605.21	밀폐용기에 넣지 아니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30	바닷가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40	기타 갑각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5	연체동물	
1605.51	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52	가리비과의 조개(여왕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53	홍합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54	갑오징어와 오징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55	문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56	클램, 새조개 및 피조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57	전복	2 단위
1605.58	달팽이(바다달팽이를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5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6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1605.61	해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62	성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63	해파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6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7	**제 17 류 당류와 설탕과자**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상태의 것에 한한다)	
1701.1	조당(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701.12	사탕무당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1.13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1.14	기타의 사탕수수당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1.9	기타	
1701.91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1.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2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의 것에 한한다), 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캐러멜	
1702.1	유당과 유당시럽	
1702.11	건조상태에서 측정한 유당(무수유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 퍼센트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2.20	단풍당과 단풍당시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2.30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과당을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건조상태에서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0 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	세번변경기준
1702.40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0 퍼센트 이상이고 50 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전화당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2.50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2.60	기타의 과당과 과당시럽(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전화당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2.90	기타[전화당 및 기타의 당류와 당시럽혼합물(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 퍼센트인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409 호는 제외한다)
1703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것에 한한다)	
1703.10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1704.10	추잉검(당으로 도포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8	**제 18 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1801.00	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으로서 생 것 또는 볶은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2.00	코코아의 각·피와 기타 코코아 웨이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3	코코아 페이스트(탈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803.10	탈지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3.20	전부 또는 일부 탈지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4.00	코코아 버터(지 및 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5.00	코코아 분말(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	
1806.10	코코아 분말(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6.20	기타 조제식료품(무게가 2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블록상·슬래브상 또는 바상의 것과 용기에 들어 있거나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상·페이스트상·분말상·입상 또는 기타 벌크상의 것에 한한다)	세번변경기준
1806.3	기타(블록상·슬래브상 또는 바상의 것에 한한다)	
1806.31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6.32	속을 채우지 아니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6.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19	**제 19 류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1901	맥아엑스,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 추출물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40 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제 0401 호 부터 제 0404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1901.10	유아용의 조제식료품(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4 류는 제외한다)
1901.20	제 1905 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4 류, 제 1006 호 및 제 1102 호부터 제 1104 호까지의 쌀제품은 제외한다)
19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4 류, 제 1006 호 및 제 1102 호부터 제 1104 호까지의 쌀제품은 제외한다)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이나 기타 물질로 속을 채운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 · 마카로니 · 누들 · 라자니아 · 뇨끼 · 레비오리 · 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902.1	조리하지 아니한 파스타(속을 채우지 아니하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902.11	조란을 넣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2.2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2.30	기타의 파스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2.40	쿠우스쿠우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3.00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상 · 낟알상 · 진주상 · 무거리상 또는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4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 콘플레이크), 낟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또는 기타 가공한 곡물(분 · 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904.10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4.20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 · 볶지 아니한 곡물플레이크와 볶은 곡물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식료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4.30	불거소맥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06 호는 제외한다)
1905	빵 · 파이 · 케이크 ·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성찬용 웨이퍼 · 제약용에 적합한 종류의 빈 캡슐 · 실링웨이퍼 · 라이스페이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905.10	귀리빵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5.20	진저브레드 및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5.3	스위트 비스킷, 와플과 웨이퍼	
1905.31	스위트 비스킷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5.32	와플과 웨이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5.40	러스크 · 토우스트브레드 및 이와 유사한 토우스트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	**제 20 류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2001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 과실 ·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01.10	오이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2	조제 또는 달리 저장처리한 토마토(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2.10	전체 또는 조각상의 토마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3	조제 또는 달리 저장처리한 버섯과 송로(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3.10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4	조제 또는 달리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며, 냉동한 것에 한하고, 제 2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4.10	감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4.90	기타 채소 및 채소의 혼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 2006 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2005.10	균질화한 채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20	감자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2008.30	감귤류 과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40	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50	살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60	버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70	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80	초본류 딸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9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 2008.19 호의 혼합물을 제외한다)	
2008.91	팜 하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93	크랜베리(박시니엄 매크로카르폰 - 박시니엄 옥시코코스 - 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97	혼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9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발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009.1	오렌지주스	
2009.11	냉동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12	냉동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브릭스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2005.40	완두(피섬 새티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5	콩(비그나종, 파세러스종)	
2005.51	탈각한 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60	아스파라거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70	올리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80	스위트콘(쟈메이스 변종 사카라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9	기타 채소(채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2005.91	죽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6.00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 · 과실 · 견과류 · 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7	잼 · 과실젤리 · 마말레이드 · 과실 또는 견과류의 퓨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조리해서 얻어진 것에 한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007.10	균질화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7.9	기타	
2007.91	감귤류의 과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008.1	견과류 · 낙화생 및 기타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008.11	낙화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19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20	파인애플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009.4	파인애플주스	
2009.41	브릭스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50	토마토주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6	포도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	
2009.61	브릭스 값이 30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0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2	그레이프프루트(포멜로우를 포함한다) 주스	
2009.21	브릭스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3	기타 단일의 감귤류의 주스	
2009.31	브릭스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1	제 21 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2101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또는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2101.1	커피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또는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	
2101.11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1.12	엑스·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하거나 또는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1.20	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또는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1.30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2	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에 한한다), 기타 단세포미생물(죽은 것에 한하며, 제 3002 호의 백신을 제외한다),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2102.10	활성효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2.20	불활성 효모, 기타 죽은 단세포 미생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2.30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	
2103.10	간장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3.20	토마토 케찹과 기타 토마토의 소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3.30	겨자의 분·조분과 조제한 겨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3.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4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2104.10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4.20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5.00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009.7	사과주스	
2009.71	브릭스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7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8	기타 단일의 과실 또는 채소의 주스	
2009.81	크랜베리(박시니엄 매크로카르폰 · 박시니엄 옥시코코스 · 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 주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90	혼합주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2106.10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6.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1211.20 호 또는 제 1302.19 호의 인삼제품은 제외한다)
22	**제 22 류 음료, 알코올 및 식초**	
2201	물(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얼음 및 눈	
2201.10	광수와 탄산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2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 2009 호의 과실주스 또는 채소주스를 제외한다)	
2202.10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1211.20 호 또는 제 1302.19 호의 인삼 제품은 제외한다)
2203.00	맥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알코올로 강화시킨 포도주를 포함한다), 포도즙(제 2009 호의 것을 제외한다)	
2204.10	발포성 포도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4.2	기타 포도주, 포도즙(알코올첨가에 따라 발효를 증지한 것에 한한다)	
2204.21	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4.30	기타 포도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5	베르뭇과 기타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 물질로 향미를 가한 것에 한한다)	
2205.10	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6.00	기타의 발효주(예: 사과술 · 배술 · 미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발효주의 혼합물 및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7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80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변성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을 불문한다)	
2207.10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80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7.20	변성에틸알코올 및 기타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을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8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80 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 증류주 · 리큐르 및 기타 주정음료	
2208.20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8.30	위스키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8.40	럼 및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기타 증류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8.50	진 및 제네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8.60	보드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8.70	리큐르류 및 코디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9.00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	**제 23 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 조제사료**	
2301	육 · 설육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 · 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지박	
2301.10	육 또는 설육의 분 · 조분 · 펠리트, 수지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306.60	팜넛 또는 핵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7.00	포도주박, 생주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8.00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9	사료용 조제품	
2309.10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4	**제 24 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2401	잎담배, 담배 부산물	
2401.10	잎담배(주맥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401.20	잎담배(주맥을 일부 또는 전부 제거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401.30	담배 부산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402	시가·셔루트·시가릴로 및 궐련(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에 한한다)	
2402.10	시가·셔루트·시가릴로(담배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402.20	궐련(담배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4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403	기타 제조담배 및 제조한 담배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담배엑스와 에센스	
2403.1	흡연용 담배(담배대용물의 포함비율을 불문한다)	
2403.11	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에 규정된 워터파이프 담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4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403.9	기타	
2403.91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403.99	기타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301.20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2	밀기울·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곡물 또는 채두류의 선별·제분 또는 기타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에 한한다)	
2302.10	옥수수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2.30	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2.40	기타 곡물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2.50	채두류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비트펄프, 버개스 및 기타 설탕 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양조 또는 증류 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303.1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3.20	비트펄프·버개스 및 기타 설탕 제조 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3.30	양조 또는 증류 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4.00	대두유의 추출 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5.00	낙화생유의 추출 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 2304 호 또는 제 2305 호의 것을 제외한 식물성 유지의 추출 시에 생기는 것에 한한다)	
2306.10	면실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20	아마인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30	해바라기씨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4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의 것	
2306.41	저에루크산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50	야자 또는 코프라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제 5 부 광물성 생산품(제 25 류-제 27 류)	
25	**제 25 류** **소금, 황, 토석류, 석고·석회와 시멘트**	
2501.00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및 순염화나트륨(수용액 여부 및 고결방지제 또는 유동제의 첨가여부를 불문한다), 해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2.00	황화철광(배소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3.00	황(승화황 · 침강황 및 콜로이드황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4	천연흑연	
2504.10	분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5	천연모래(착색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 26 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를 제외한다)	
2505.10	규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6	석영(천연모래를 제외한다), 규암[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06.10	석영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6.20	규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7.00	고령토와 기타 고령토질의 점토(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8	기타 점토(제 6806 호의 팽창된 점토를 제외한다) · 홍주석 · 남정석과 규선석(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뮬라이트, 샤모트 또는 다이나스어드	
2508.10	벤토나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8.30	내화점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8.40	기타 점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8.50	홍주석, 남정석 및 규선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8.60	뮬라이트	4 단위
2508.70	샤모트 또는 다이나스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9.00	초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0	천연인산칼슘, 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 및 인산염을 함유한 초크	
2510.10	분쇄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0.20	분쇄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1	천연황산바륨(중정석), 천연탄산바륨(독중석)(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 2816 호의 산화바륨을 제외한다)	
2511.10	천연황산바륨(중정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1.20	천연탄산바륨(독중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2.00	규조토(예: 키이젤거어, 트리폴라이트 및 다이아토마이트)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3	부석, 금강사, 천연커런덤 · 천연석류석과 기타 천연연마재료(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13.10	부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3.20	금강사, 천연커런덤, 천연석류석과 기타 천연연마재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4.00	슬레이트[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5	대리석 · 트래버틴 · 에코신 및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석회질의 암석(겉보기 비중이 2.5 이상인 것에 한한다)과 앨러바스터[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15.1	대리석 및 트래버틴	
2515.11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5.12	톱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5.20	에코신과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석회질의 암석, 앨러바스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6	화강암 · 반암 · 현무암 · 사암과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암석[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2519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용융마그네시아, 소결한 마그네시아(소결하기 전에 첨가된 소량의 기타 산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기타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19.10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0	석고, 무수석고, 플라스터(하소한 석고 또는 황산칼슘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와 촉진제 또는 지연제를 소량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20.10	석고, 무수석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0.20	플라스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1.00	석회석용제, 석회석과 기타 석회질의 암석(석회 또는 시멘트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2	생석회, 소석회와 수경성 석회(제 2825 호의 산화칼슘과 수산화칼슘을 제외한다)	
2522.10	생석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2.20	소석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2.30	수경성 석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3	포트랜드시멘트 · 알루미나시멘트 · 슬랙시멘트 · 수퍼설페이트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 시멘트(착색하거나 클링커형태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23.10	시멘트클링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3.2	포트랜드시멘트	
2523.21	백시멘트(인공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3.30	알루미나시멘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3.90	기타 수경성 시멘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4	석면	
2524.10	청석면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16.1	화강암	
2516.11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6.12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6.20	사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6.90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암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7	자갈 · 왕자갈 · 쇄석(콘크리트용 · 도로포장용 · 철도용 또는 기타 밸러스트용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 · 싱글과 플린트(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슬랙 · 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이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타르매카담, 제 2515 호 또는 제 2516 호의 암석을 입상 · 파편상 · 분상으로 한 것(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17.10	자갈 · 왕자갈 · 쇄석(콘크리트용 · 도로포장용 · 철도용 또는 기타 밸러스트용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 · 싱글과 플린트(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7.20	슬랙 · 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소호 제 2517.10 호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7.30	타르매카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7.4	제 2515 호 또는 제 2516 호의 암석을 입상 · 파편상 · 분상으로 한 것(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17.41	대리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7.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8	백운석[하소 또는 소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톱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 응결백운석	
2518.10	하소 또는 소결하지 아니한 백운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8.20	하소 또는 소결한 백운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8.30	응결백운석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252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5	운모(쪼갠 것을 포함한다), 운모 웨이스트	
2525.10	조운모 및 판상 또는 쪼갠 운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5.20	운모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5.30	운모 웨이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6	천연동석[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레브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활석	
2526.10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 분상도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6.20	파쇄 또는 분상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8.00	천연붕산염과 그 정광(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천연염수로부터 분리한 붕산염은 제외한다), 천연붕산(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붕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9	장석, 백류석, 하석과 하석섬장암, 형석	
2529.10	장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9.2	형석	
2529.21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7 퍼센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9.22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7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9.30	백류석, 하석과 하석섬장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30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물	
2530.10	질석, 진주암과 녹니석(팽창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30.20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황산마그네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3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	**제 26 류 광, 슬랙 및 회**	
2601	철광과 그 정광(배소한 황화철광을 포함한다)	
2601.1	철광과 그 정광(배소한 황화철광을 제외한다)	
2601.11	응결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1.12	응결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1.20	배소한 황화철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2.00	망간광과 그 정광(건조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0 퍼센트 이상인 철 망간광과 그 정광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3.00	동광과 그 정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4.00	니켈광과 그 정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5.00	코발트광과 그 정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6.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7.00	연광과 그 정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8.00	아연광과 그 정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9.00	주석광과 그 정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1.00	텅스텐광과 그 정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2	우라늄광 또는 토륨광과 그 정광	
2612.10	우라늄광과 그 정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2.20	토륨광과 그 정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3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	
2613.10	배소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4.00	티타늄광과 그 정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5	니오븀광·탄탈륨광·바나듐광 또는 지르코늄광과 그들의 정광	
2615.1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5.90	기타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26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	**제 27 류** **광물성 연료·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이 류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 사항들은 이 정의의 목적상 화학 반응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제 2710 호의 목적상, 다음 공정들은 원산지의 지위를 부여한다. 가. 상압증류법: 석유가 증류탑에서 끓는점에 따라 분획된 후 그 증기가 응축하여 상이한 액화 분획물이 되는 분리공정 나. 감압증류법: 분자증류법보다 낮지 않지만, 대기압 보다 낮은 압력에서 증류	
2701	석탄,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마젝탄 및 이와 유사한 고형연료	
2701.1	석탄(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응결한 것을 제외한다)	
2701.11	무연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1.12	유연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1.19	기타 석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1.20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마젝탄과 이와 유사한 고형연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2	갈탄(응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흑옥을 제외한다)	
2702.10	갈탄(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응결한 것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2.20	응결한 갈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3.00	토탄(토탄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4.00	코크스와 반성코크스(석탄·갈탄 또는 토탄으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응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레토르트 카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5.00	석탄가스·수성가스·발생로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 및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를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2616	귀금속광과 그 정광	
2616.10	은광과 그 정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7	기타의 광과 그 정광	
2617.10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8.00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입상의 슬랙(슬랙샌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9.00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슬랙·드로스(입상의 슬랙을 제외한다)·스케일링 및 기타 웨이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20	슬랙, 회 및 잔재물(금속, 비소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에 한하며,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것을 제외한다)	
2620.1	주로 아연을 함유한 것	
2620.11	경아연 스펠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2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20.2	주로 연을 함유하는 것	
2620.21	유연 가솔린 슬러지 및 유연 안티녹제 화합물 슬러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2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20.30	주로 동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20.40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20.60	비소, 수은, 탈륨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의 채취용 또는 그 화합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20.9	기타	
2620.91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 또는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2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21	기타 슬랙과 회[해초의 회(켈프)를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와 잔재물	
2621.10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와 잔재물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706.00	석탄·갈탄·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기타의 광물성 타르(탈수 또는 부분 증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7	고온 콜타르를 증류하여 얻은 기름 및 기타 물품, 이와 유사한 물품(방향족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2707.10	벤조올(벤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6 단위 세번변경기준(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에 한한다)
2707.20	톨루올(톨루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6 단위 세번변경기준(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에 한한다)
2707.30	크실올(크실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6 단위 세번변경기준(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에 한한다)
2707.40	나프탈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6 단위 세번변경기준(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에 한한다)
2707.50	기타 방향족 탄화수소의 혼합물[섭씨 250 도에서 에이·에스·티·엠·디(ASTM D)86 의 방법으로 증류한 양이 전용량의 65 퍼센트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6 단위
		세번변경기준(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에 한한다)
2707.9	기타	
2707.91	크레오소트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6 단위 세번변경기준(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에 한한다)
27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6 단위 세번변경기준(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에 한한다)
2708	피치와 피치코크스(콜타르 또는 기타 광물성 타르에서 얻어지는 것에 한한다)	
2708.10	피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8.20	피치코크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9.00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0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7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웨이스트오일	
2710.1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7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과 웨이스트오일을 제외한다)	
2710.12	경질석유 및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제 2710 호로부터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또는 제 2710 호로부터의 변경(화학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에 의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2711	석유가스와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	
2711.1	액화한 것	
2711.11	천연가스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2711.21 호는 제외한다)
2711.12	프로판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2711.29 호는 제외한다)
2711.13	부탄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2711.29 호는 제외한다)
2711.14	에틸렌 · 프로필렌 · 부틸렌 및 부타디엔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2711.29 호는 제외한다)
2711.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2711.29 호는 제외한다)
2711.2	가스상의 것	
2711.21	천연가스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2711.11 호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의 변경(화학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에 의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271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제 2710 호로부터의 변경(화학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에 의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2710.20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70 퍼센트 이상이고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웨이스트오일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제 2710 호로부터의 변경(화학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에 의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2710.9	웨이스트 오일	
2710.91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제 2710 호로부터의 변경(화학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에 의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2710.99	기타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제외한다)
271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2711.12 호부터 제 2711.21 호까지는 제외한다)
2712	석유젤리, 파라핀왁스 · 마이크로크리스털린석유왁스 · 슬랙왁스 · 오우조커라이트 · 갈탄왁스 · 토탄왁스, 기타 광물성왁스와 합성 또는 기타의 공정에 따라 얻어지는 이와 유사한 물품(착색 여부를 불문한다)	
2712.10	석유젤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2.20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75 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3	석유코크스, 석유아스팔트 및 석유 또는 역청유의 기타 잔재물	
2713.1	석유코크스	
2713.11	하소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3.12	하소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3.20	석유아스팔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3.90	석유 또는 역청유의 기타 잔재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4	천연의 역청 및 아스팔트, 역청질혈암 · 유모혈암 및 타르샌드, 아스팔타이트와 아스팔트질의 암석	
2714.10	역청질혈암 · 유모혈암 및 타르샌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5.00	역청질혼합물[천연아스팔트 · 천연역청 · 석유아스팔트 · 광물성 타르 또는 광물성 타르피치를 기제로 한 것에 한한다(예 : 역청질매스틱, 컷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6.00	전기에너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6 부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제 28 류-제 38 류)	
Rule 1	규칙 1. 화학반응 원산지규정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제 28 류부터 제 38 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제 3823 호의 상품은 제외한다)은, 그러한 화학반응이 당사국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문맥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학반응"규정은 상기 류에 분류된 어떠한 상품에도 적용될 수 있다. 주: 이 부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은 원산지 상품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Rule 2	규칙 2. 정제 원산지규정 제 28 류부터 제 35 류까지와 제 38 류의 목적상, 정제는 상품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정제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고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에 한한다. 가. 정제의 결과로 기존 불순물의 함량 대비 80 퍼센트의 불순물이 제거된 경우, 또는 나.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의 결과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적용에 적절한 상품이 된 경우: 1) 의약용, 의료용, 화장품용, 수의용, 또는 식용 물질 2) 분석, 진단, 또는 실험실용 화학제품 및 시약 3) 미량요소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및 성분 4) 특수 광학용 5)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독성용 6) 생명공학용 7)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캐리어, 또는 8) 핵등급용	
Rule 3	규칙 3. 혼합 및 배합 원산지규정 제 30 류, 제 31 류, 제 3302 호, 소호 제 3502.20 호, 제 3506 호부터 제 3507 호까지 및 제 3707 호의 목적상,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혼합 또는 배합(분산을 포함한다)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투입재료와는 상이하고, 그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 생산된 경우, 이 상품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Rule 4	규칙 4. 입자 크기의 변화 원산지규정 제 30 류 및 제 31 류의 목적상, 가. 의도적이고 통제된 상품의 입자크기의 축소(단순 분쇄 (또는 압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포함한다)	세번변경기준
2804	수소 · 희(稀)가스 및 기타 비(非)금속원소	
2804.10	수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2	희가스	
2804.21	아르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30	질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40	산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50	붕소, 텔루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6	규소	
2804.61	규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 퍼센트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70	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80	비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90	셀레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5	알칼리금속 또는 알칼리토류금속, 희토류금속 ·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되거나 상호 합금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수은	
2805.1	알칼리 또는 알칼리토류 금속	
2805.11	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5.12	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5.30	희토류금속 ·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되거나 상호 합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5.40	수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6	염화수소(염산), 클로로황산	
2806.10	염화수소(염산)	6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결과물의 목적에 관련된 정의된 입자 크기, 정의된 입자크기 분포 또는 정의된 표면적을 가지면서 투입재료와는 상이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진 상품으로 되는 경우, 이 상품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나. 의도적이고 통제된 상품의 입자크기의 변형(단순 압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결과물의 목적에 관련된 정의된 입자 크기, 정의된 입자크기 분포 또는 정의된 표면적을 가지면서 투입재료와는 상이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진 상품으로 되는 경우, 이 상품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Rule 5	규칙 5. 표준 물질 원산지규정 제 28 류부터 제 32 류까지와 제 35 류 및 제 38 류의 목적상, 표준 물질의 생산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규칙의 목적상, '표준물질'(표준 용액을 포함한다)은 제조자에 의해 보증된 정확한 순도 또는 비율을 가진 것으로 분석, 검정 또는 참조용에 적절한 조제품을 말한다.	
Rule 6	규칙 6. 이성체 분리 원산지규정 제 28 류부터 제 32 류까지와 제 35 류의 목적상, 이성체 혼합물로부터 이성체의 유리 또는 분리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Rule 7	규칙 7. 분리 금지 비원산지 물질/구성요소는 인조혼합물에서 단순히 한 개 이상의 개별적인 물질 또는 구성요소를 분리한 결과로서, 세번이 변경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규칙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할 것이다. 다만, 분리된 물질/구성요소는 그 자체로 또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반응을 거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28	**제 28 류**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2801	플루오르 · 염소 · 브롬 및 요드	
2801.10	염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1.20	요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1.30	플루오르, 브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2.00	승화황 또는 침강황, 콜로이드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3.00	탄소(카본블랙과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탄소물품을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2806.20	클로로황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7.00	황산, 발연황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8.00	질산, 황질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9	오산화인, 인산, 폴리인산(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809.10	오산화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9.20	인산과 폴리인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0.00	붕소의 산화물, 붕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1	기타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2811.1	기타 무기산	
2811.11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르화수소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1.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1.2	기타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2811.21	이산화탄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1.22	이산화규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2	비(非)금속의 할로겐화물과 산화할로겐화물	
2812.10	염화물과 산화염화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2.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3	비(非)금속의 황화물, 상관습상의 삼황화인	
2813.10	이황화탄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3.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4	무수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2814.10	무수암모니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4.20	암모니아수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2815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 수산화칼륨(가성칼륨), 과산화나트륨 또는 과산화칼륨	
2815.1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2815.11	고체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2815.12 호는 제외한다)
2815.12	수용액의 것(소다액 또는 액상소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2815.11 호는 제외한다)
2815.20	수산화칼륨(가성칼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5.30	과산화나트륨 또는 과산화칼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6	수산화마그네슘 및 과산화마그네슘, 스트론튬 또는 바륨의 산화물 · 수산화물 및 과산화물	
2816.10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6.40	스트론튬 또는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과산화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7.00	산화아연, 과산화아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8	인조커런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2818.10	인조커런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8.20	산화알루미늄(인조커런덤을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8.30	수산화알루미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9	산화크로뮴과 수산화크로뮴	
2819.10	삼산화크로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9.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0	산화망간	
2820.10	이산화망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820.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1	산화철 및 수산화철, 어드컬러(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산화제 2 철로서 계산하여 전중량의 70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2821.10	산화철과 수산화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1.20	어드컬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2.00	산화코발트와 수산화코발트, 상관습상의 산화코발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3.00	산화티타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4	산화연, 연단 및 오렌지연	
2824.10	일산화연(리타지, 메시코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	히드라진과 히드록실아민 및 그들의 무기염, 기타 무기염기, 기타 금속산화물·금속수산화물 및 금속과산화물	
2825.10	히드라진과 히드록실아민 및 그들의 무기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20	산화리튬 및 수산화리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30	산화바나듐 및 수산화바나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40	산화니켈 및 수산화니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50	산화동 및 수산화동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60	산화게르마늄 및 이산화지르코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70	산화몰리브덴 및 수산화몰리브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80	산화안티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6	플루오르화물, 플루오르화규산염·플로오르화알루미늄산염 및 기타 플루오르착염	
2826.1	플루오르화물	
2826.12	플루오르화알루미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6.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6.30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빙정석)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6.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	염화물·산화염화물 및 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 및 산화브롬화물, 요드화물 및 산화요드화물	
2827.10	염화암모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20	염화칼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3	기타 염화물	
2827.31	마그네슘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32	알루미늄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35	니켈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4	산화염화물 및 수산화염화물	
2827.41	산화염화동과 수산화염화동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5	브롬화물과 산화브롬화물	
2827.51	브롬화나트륨 또는 브롬화칼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60	요드화합물과 산화요드화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8	하이포아염소산염, 상관습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아염소산염, 하이포아브롬산염	
2828.10	상관습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기타 하이포아염소산칼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8.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9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 브롬산염과 과브롬산염, 요드산염과 과요드산염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829.1	염소산염	
2829.11	염소산나트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9.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9.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0	황화물, 폴리황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830.10	황화나트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0.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1	아이티온산염과 술폭실산염	
2831.10	아이티온산나트륨 및 술폭실산나트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1.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2	아황산염, 티오황산염	
2832.10	아황산나트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2.20	기타 아황산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2.30	티오황산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	황산염, 명반,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2833.1	황산나트륨	
2833.11	황산이나트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2	기타 황산염	
2833.21	마그네슘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22	알루미늄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24	니켈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25	동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27	바륨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30	명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40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4	아질산염, 질산염	
2834.10	아질산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4.2	질산염	
2834.21	질산칼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4.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5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및 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835.10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 및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5.2	인산염	
2835.22	인산일나트륨 또는 인산이나트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5.24	인산칼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5.25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5.26	기타 인산칼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5.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5.3	폴리인산염	
2835.31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5.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6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밤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2836.20	탄산이나트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6.30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6.40	탄산칼륨	6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2836.50	탄산칼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6.60	탄산바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6.9	기타	
2836.91	탄산리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6.92	탄산스트론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6.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7	시안화물, 산화시안화물과 시안착염	
2837.1	시안화물과 산화시안화물	
2837.11	나트륨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7.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7.20	시안착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9	규산염, 상관습상의 알칼리금속의 규산염	
2839.1	규산나트륨	
2839.11	메타규산나트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9.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9.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0	붕산염,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2840.1	사붕산이나트륨(정제붕사)	
2840.11	무수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0.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0.20	기타 붕산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0.30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1	산화금속산염 또는 과산화금속산염	
2841.30	중크롬산나트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1.50	기타 크롬산염과 중크롬산염, 과산화크롬산염	6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2841.6	아망간산염, 망간산염 및 과망간산염	
2841.61	과망간산칼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1.6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1.70	몰리브덴산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1.80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1.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2	기타 무기산염 또는 과산화산염(아지화물을 제외하며,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2842.10	규산의 겹염 또는 착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2.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3	콜로이드 귀금속, 귀금속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귀금속의 아말감	
2843.10	콜로이드 귀금속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3.2	은 화합물	
2843.21	질산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3.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3.30	금 화합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3.90	기타 화합물, 아말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4	방사성원소 및 방사성동위원소(핵분열성 또는 연료핵친원소와 동위원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화합물, 이들의 물품을 함유한 혼합물 및 잔재물	
2844.10	천연우라늄 및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물(천연우라늄 또는 천연우라늄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4.20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 및 그 화합물,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플루토늄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53.00	기타 무기화합물(증류수 또는 전도도수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한다), 액체공기(희가스가 제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압축공기, 아말감(귀금속의 아말감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	**제 29 류 유기화학품**	
2901	비환식탄화수소	
2901.10	포화비환식탄화수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1.2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	
2901.21	에틸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1.22	프로펜(프로필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1.23	부텐(부틸렌) 및 이들의 이성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1.24	1,3-부타디엔 및 이소프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	환식탄화수소	
2902.1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및 시클로테르펜	
2902.11	시클로헥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20	벤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30	톨루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4	크실렌	
2902.41	오르토-크실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42	메타-크실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43	파라-크실렌	6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844.30	우라늄 235 를 열화시킨 우라늄 및 그 화합물, 토륨 및 그 화합물, 합금 · 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 · 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 를 열화시킨 우라늄 · 토륨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4.40	방사성원소 및 방사성동위원소와 소호 제 2844.10 호 · 제 2844.20 호 또는 제 2844.30 호의 것을 제외한 이들의 화합물, 합금 · 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의 방사성원소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방사성 잔재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4.50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된 연료요소(카트리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5	동위원소(제 2844 호의 것을 제외한다), 그 동위원소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845.10	중수(산화 중수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6	희토류금속 · 이트륨 · 스칸듐 또는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	
2846.10	세륨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7.00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8.00	인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인철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9	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849.10	탄화칼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9.20	탄화규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9.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50.00	수소화물 · 질화물 · 아지드화물 · 규화물 및 붕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 2849 호의 탄화물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52.1	무기 또는 유기의 수은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아말감은 제외한다)	
2852.10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52.90	기타	6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2902.44	혼합크실렌이성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50	스티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60	에틸벤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70	큐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2903.1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소화유도체	
2903.11	염화메탄(염화메틸) 및 염화에탄(염화에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12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13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14	사염화탄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15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2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소화유도체	
2903.21	염화비닐(염화에틸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22	삼염화에틸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23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3	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브롬화 또는 요드화유도체	
2903.31	이브롬화에틸렌(ISO)(1,2-디브로모에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7	비환식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서로 다른 2 종 이상의 할로겐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	
2903.71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6 단위
2903.72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73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74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75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76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및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77	기타(불소 및 염소만으로 퍼할로겐화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78	기타 퍼할로겐화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7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8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2903.81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82	앨드린(ISO), 클로르덴(ISO) 및 헵타클로르(ISO)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9	방향족 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2903.91	클로로벤젠·오르토-디클로로벤젠 및 파라-디클로로벤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92	헥사클로로벤젠(ISO) 및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4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의 여부를 불문한다)	
2904.10	술폰화유도체와 그들의 염 및 에틸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904.20	니트로 또는 니트로소화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4.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	비환식알코올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5.1	포화 1 가알코올	
2905.11	메탄올(메틸알코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12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과 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13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14	기타 부탄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16	옥탄올(옥틸알코올)과 그 이성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17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및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2	불포화 1 가알코올	
2905.22	비환식테르펜알코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3	2 가알코올	
2905.31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32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4	기타 다가알코올	
2905.41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42	펜타에리트리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43	만니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44	D-글루시톨(소르비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45	글리세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5	비환식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5.51	에스클로비놀(IN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6	환식알코올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6.1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	
2906.11	멘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6.12	시클로헥산올, 메틸시클로헥산올 및 디메틸시클로헥산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6.13	스테롤과 이노시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6.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6.2	방향족	
2906.21	벤질알코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6.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	페놀, 페놀알코올	
2907.1	1 가페놀	
2907.11	페놀(석탄산)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12	크레졸과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13	옥틸페놀·노닐페놀과 그들의 이성체,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15	나프톨과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2	다가페놀, 페놀알코올	
2907.21	레소르시놀과 그 염	6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41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43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또는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44	에틸렌글리콜의 기타 모노알킬에테르 또는 디에틸렌글리콜의 기타 모노알킬에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50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60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케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0	3 원고리의 에폭시드 · 에폭시알코올 · 에폭시페놀 및 에폭시에테르와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0.10	옥시란(에틸렌 옥사이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0.20	메틸옥시란(프로필렌 옥사이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0.30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0.40	디엘드린(ISO, IN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0.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1.00	아세탈 및 헤미아세탈(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	알데히드(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파라포름알데히드	
2912.1	비환식알데히드(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912.11	메탄알(포름알데히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12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2	환식알데히드(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2907.22	히드로퀴논(퀴놀)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23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디페닐올프로판)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8	페놀 또는 페놀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8.1	할로겐화유도체와 그들의 염	
2908.11	펜타클로로페놀(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8.9	기타	
2908.91	디노셉(ISO)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8.92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NOC(ISO)] 및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	에테르 · 에테르알코올 · 에테르페놀 · 에테르알코올페놀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1	비환식에테르와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11	디에틸에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20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에테르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30	방향족에테르와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4	에테르 알코올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912.21	벤즈알데히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4	알데히드-알코올 · 알데히드-에테르 · 알데히드-페놀과 기타 산소관능의 알데히드	
2912.41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42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50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60	파라포름알데히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3.00	제 2912 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	케톤 및 퀴논(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4.1	비환식케톤(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914.11	아세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12	부탄온(메틸에틸케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13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2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케톤(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914.22	시클로헥사논과 메틸시클로헥사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23	이오논과 메틸이오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3	방향족 케톤(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914.31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40	케톤-알코올과 케톤-알데히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50	케톤-페놀과 기타 산소관능의 케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6	퀴논	
2914.61	안트라퀴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6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70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5.1	포름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2915.11	포름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12	포름산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13	포름산의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2	초산과 그 염, 무수초산	
2915.21	초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24	무수초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3	초산에스테르	
2915.31	초산에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32	초산비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33	초산노르말부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36	초산디노셉(ISO)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2917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토로소화유도체	
2917.1	비환식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2917.11	옥살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12	아디프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13	아젤라산·세바스산과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14	무수말레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2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3	방향족 폴리카르복시산,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2917.32	오르토프탈산디옥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33	오르토프탈산디노닐 또는 오르토프탈산디데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34	기타 오르토프탈산의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35	무수프탈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36	테레프탈산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37	테레프탈산디메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 및 과산화산,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8.1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기타 산소관능을 가지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915.40	모노클로로 아세트산·디클로로 아세트산 또는 트리클로로 아세트산과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50	프로피온산, 그 염 및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60	부탄산, 펜탄산,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70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 및 과산화산,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6.1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2916.11	아크릴산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12	아크릴산의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13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14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15	올레산·리놀레산·리놀렌산과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16	비나파크릴(ISO)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2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3	방향족 모노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2916.31	벤조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32	과산화벤조일과 염화벤조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34	페닐아세트산 및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39	기타	6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2920	기타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를 제외한다) 및 그들의 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20.1	티오인산에스테르(포스포로티오에이트) 및 그들의 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20.11	파라티온(ISO) 및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0.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0.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	아민관능화합물	
2921.1	비환식모노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2921.11	메틸아민 · 디메틸아민 또는 트리메틸아민과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2	비환식폴리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2921.21	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22	헥사메틸렌디아민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30	포화지환식아민, 불포화지환식아민, 시클로테르펜 모노아민 또는 폴리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	방향족 모노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2921.41	아닐린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2	아닐린유도체와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3	톨루이딘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4	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5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 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6	암페타민(INN), 벤즈페타민(INN), 덱스암페타민(INN), 에틸암페타민(INN), 펜캄파민(INN), 레페타민(IN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그들의 유도체	
2918.11	락트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12	타르타르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13	타르타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14	시트르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15	시트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16	글루콘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18	클로로벤질레이트(ISO)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2	페놀관능기의 카르복시산(기타 산소관능을 가지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2918.21	살리실산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22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23	기타 살리실산의 에스테르와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30	알데히드 또는 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기타 산소관능을 가지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9	기타	
2918.91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와 그 염 및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9	인산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9.1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9.90	기타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레브암페타민(INN), 메페노렉스(INN), 펜터민(INN), 그들의 염	
2921.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5	방향족 폴리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2921.51	오르토-페닐렌디아민 · 메타-페닐렌디아민 · 파라-페닐렌디아민 · 디아미노톨루엔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2922.1	아미노알코올(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 그들의 에테르와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	
2922.11	모노에탄올아민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12	디에탄올아민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13	트리에탄올아민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14	덱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2	아미노나프톨 및 기타 아미노페놀(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 그들의 에테르 및 에스테르, 그들의 염	
2922.21	아미노히드록시 나프탈렌술폰산과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3	아미노-알데히드 · 아미노-케톤과 아미노-퀴논(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 그들의 염	
2922.31	암페프라몬(INN), 메타돈(INN) 및 노르메타돈(INN),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4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과 그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	
2922.41	리신과 그 에스테르,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42	글루탐산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43	안트라닐산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44	틸리딘(INN)과 그 염	6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2922.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50	아미노-알코올페놀 · 아미노산페놀과 기타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3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기타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923.10	콜린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3.20	레시틴과 기타 포스포아미노리피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3.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4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2924.1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2924.11	메프로바메이트(IN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4.12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모노크로토포스(ISO) 및 포스파미돈(ISO)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4.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4.2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2924.21	우레인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4.23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앤-아세틸 안트라닐산) 및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4.24	에티나메이트(IN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4.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5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 및 이민관능화합물	
2925.1	이미드와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2925.11	사카린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5.12	글루테티미드(IN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5.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925.2	이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2925.21	클로르디메포름(ISO)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5.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6	니트릴관능화합물	
2926.10	아크릴로니트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6.20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6.30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메타돈(INN) 제조중간체(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6.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7.00	디아조화합물 · 아조화합물 또는 아족시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8.00	히드라진 또는 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9	기타 질소관능화합물	
2929.10	이소시아네이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9.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0	유기-황화합물	
2930.20	티오카르바메이트와 디티오카르바메이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0.30	티우람모노술파이드 · 티우람디술파이드 또는 티우람테트라술파이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0.40	메티오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0.50	캡타폴(ISO) 및 메타미도포스(ISO)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0.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1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2931.10	테트라메틸납 및 테트라에틸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1.20	트리부틸틴 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	산소 헤테로 원자(들)만을 가지는 산소헤테로고리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932.1	붙지 아니한 푸란고리(수소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2.11	테트라히드로푸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12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13	푸르푸릴 알코올과 테트라히드로 푸르푸릴 알코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20	락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2.9	기타	
2932.91	이소사프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92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93	피페로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94	사프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95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	질소헤테로 원자(들)만을 가진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	
2933.1	붙지 아니한 피라졸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11	페나존(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2	붙지 아니한 이미다졸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21	히단토인과 그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2933.6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7	락탐	
2933.71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72	클로바잠(INN)과 메치푸리론(IN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79	기타 락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9	기타	
2933.91	알프라졸람(INN), 카마제팜(INN),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 클로나제팜(INN), 클로라제페이트, 델로라제팜(INN), 디아제팜(INN), 에스타졸람(INN), 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 플루디아제팜(INN), 플루니트라제팜(INN), 플루라제팜(INN), 할라제팜(INN), 로라제팜(INN), 로르메타제팜(INN), 마진돌(INN), 메다제팜(INN), 미다졸람(INN), 니메타제팜(INN), 니트라제팜(INN), 놀다제팜(INN), 옥사제팜(INN), 피나제팜(INN), 프라제팜(INN), 피로발레론(INN), 테마제팜(INN), 테트라제팜(INN) 및 트리아졸람(INN),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4	핵산 및 그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기타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4.10	붙지 아니한 티아졸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4.20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4.30	페노티아진 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4.9	기타	
2934.91	아미노렉스(INN), 브로티졸람(INN), 클로티아제팜(INN), 클록사졸람(INN), 덱스트로모라마이드(INN), 할록사졸람(INN), 케타졸람(INN), 메소카브(INN), 옥사졸람(INN), 페몰린(INN), 펜디메트라진(INN), 펜메트라진(INN) 및 서펜타닐(INN),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4.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5.00	술폰아미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 또는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한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933.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3	붙지 아니한 피리딘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31	피리딘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32	피페리딘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33	알펜타닐(INN)·아닐레리딘(INN)·베지트라마이드(INN)·브로마제팜(INN)·디페녹신(INN)·디펜옥실레이트(INN)·디피파논(INN)·펜타닐(INN)·케토베미돈(INN)·메틸페니데이트(INN)·펜타조신(INN)·페치딘(INN)·페치딘(INN) 제조 중간체 에이·펜사이클리딘(INN)(PCP)·페노페리딘(INN)·피프라드롤(INN)·피리트라미드(INN)·프로피람(INN) 및 트리메페리딘(INN),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4	퀴놀린고리 또는 이소퀴놀린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933.41	레보파놀(INN) 및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5	피리미딘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52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53	아로바르비탈(INN), 아모바르비탈(INN), 바르비탈(INN), 부탈비탈(INN), 부토바르비탈(INN), 싸이클로바르비탈(INN), 메틸페노바르비탈(INN), 펜토바르비탈(INN), 페노바르비탈(INN), 섹부타바르비탈(INN), 세코바르비탈(INN) 및 비닐비탈(INN),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54	기타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 유도체,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55	로프라졸람(INN), 메크로콰론(INN), 메타콰론(INN) 및 지페프롤(INN),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6	붙지 아니한 트리아진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61	멜라민	6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농축물을 포함한다) 및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936.2	비타민과 그들의 유도체(혼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936.21	비타민 A와 그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2	비타민 B1과 그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3	비타민 B2와 그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4	D 또는 DL-판토텐산(비타민 B3 또는 비타민 B5)과 그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5	비타민 B6와 그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6	비타민 B12와 그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7	비타민 C와 그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8	비타민 E와 그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9	기타 비타민과 그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6.90	기타(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 및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7	호르몬, 프로스타글란딘, 트롬복산 및 류코트리엔(천연의 것 또는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 그들의 유도체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 것(변성된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2937.1	폴리펩타이드 호르몬, 프로테인 호르몬과 글리코프로테인 호르몬, 그들의 유도체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11	소마토트로핀과 그 유도체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12	인슐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2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들의 유도체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21	코르티손·히드로코르티손·프레드니손(데히드로코르티손)과 프레드니소론(데히드로히드로코르티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22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23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50	프로스타글렌딘, 트롬복산과 류코트리엔, 그들의 유도체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8	글리코시드(천연의 것 또는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 및 그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2938.10	루토시드(루틴)와 그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	식물 알칼로이드(천연의 것 또는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 및 그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2939.1	아편의 알칼로이드와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2939.11	양귀비 줄기 농축물, 버프레노핀(INN),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INN), 에틸모르핀, 에토르핀(INN), 헤로인, 히드로코돈(INN), 히드로모르폰(INN), 모르핀, 니코모르핀(INN), 옥시코돈(INN), 옥시모르폰(INN), 폴코딘(INN), 테바콘(INN)과 테바인, 그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20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30	카페인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4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2941.50	에리즈로마이신과 그 유도체, 그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4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42.00	기타 유기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	**제 30 류 의료용품**	
3001	장기 요법용의 선과 기타 기관 (건조한 것에 한하며, 분상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선·기타 기관 또는 그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한 기타 인간 또는 동물성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3001.20	선·기타 기관 또는 그들의 분비물의 추출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2	인혈, 치료용·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기타 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3002.10	면역혈청·기타 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2.20	백신(인체의약용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2.30	백신(동물의약용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2.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3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 3002 호·제 3005 호 또는 제 3006 호의 물품은 제외하고,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을 제외한다)	
3003.10	페니실린 또는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에 한한다)를 함유한 것 또는 스트렙토마이신이나 그들의 유도체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939.41	에페드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42	슈도에페드린(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43	캐친(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44	노르에페드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5	테오피린과 아미노피린(테오피린-에틸렌디아민) 및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2939.51	페네틸린(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6	맥각 알칼로이드와 그 유도체, 그들의 염	
2939.61	엘고메트린(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62	엘고타민(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63	리세르그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9	기타	
2939.91	코카인, 에크고닌, 레보메탐페타민, 메탐페타민(INN), 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그들의 염, 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40.00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에 한하며, 자당·유당·맥아당·포도당 및 과당을 제외한다), 당에테르·당아세탈·당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제 2937 호·제 2938 호 또는 제 2939 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41	항생물질	
2941.10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41.20	스트렙토마이신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41.30	테트라사이클린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41.40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그들의 염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함유한 것	
3003.20	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3.3	호르몬 또는 제 2937 호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3003.31	인슐린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3.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3.40	알칼로이드 또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호르몬, 제 2937 호의 기타 물품 또는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4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제 3002 호 · 제 3005 호 또는 제 3006 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3004.10	페니실린 또는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에 한한다)를 함유한 것 또는 스트렙토마이신이나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003 호는 제외한다)
3004.20	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003 호는 제외한다)
3004.3	호르몬 또는 제 2937 호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3004.31	인슐린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003 호는 제외한다)
3004.32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함유한 것, 그들의 유도체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003 호는 제외한다)
300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003 호는 제외한다)
3004.40	알칼로이드 또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호르몬 · 제 2937 호의 기타 물품 또는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003 호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제외한다)
3004.50	비타민 또는 제 2936 호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기타 의약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003 호는 제외한다)
30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003 호는 제외한다)
3005	탈지면 · 거즈 · 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 : 피복재 · 반창고 · 습포제)으로서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또는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	
3005.10	접착성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기타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	의약용품(이 류의 주 제 4 호의 물품에 한한다)	
3006.10	살균한 외과용의 캣거트,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흡수성 외과용 또는 치과용 사(絲)를 포함한다] 및 살균한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살균한 라미나리아의 텐트, 살균한 흡수성 외과용 또는 치과용 지혈제, 살균한 외과용 또는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20	혈액형 분류용 시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30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40	치과용 시멘트와 기타 치과용 충전제, 뼈형성용 시멘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50	구급상자와 구급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60	호르몬 · 제 2937 호의 기타 제품 또는 살정자제를 기제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70	외과 수술이나 신체검사 시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 또는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9	기타	
3006.91	장루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92	폐의료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1	제 31 류 비료	
3101.00	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2	질소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3102.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2	황산암모늄,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3102.21	황산암모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30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40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 또는 기타 비료가 아닌 무기물을 가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50	질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60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겹염 및 혼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80	요소 및 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 또는 암모니아용액으로 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90	기타(위의 소호에 열거하지 아니한 혼합물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3	인산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3103.10	과인산석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용기를 포함한 총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20	질소 · 인 및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3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4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및 이와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5	2 종의 비료요소인 질소와 인을 함유한 기타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3105.51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59	기타	4 단위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4	칼륨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3104.20	염화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4.30	황산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비료요소인 질소 · 인 및 칼륨 중 2 종 또는 3 종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기타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정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3105.10	이 류의 물품[정상(錠狀, tablet)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1.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2	합성유기유연제, 무기유연제, 조제유연제(천연유연제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유연전 처리용의 효소계 조제품	
3202.10	합성유기유연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2.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3.00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염색엑스를 포함하고 수탄을 제외한다),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	합성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에 한한다), 형광증백제 또는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물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204.1	합성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에 한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60	2 종의 비료요소인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	**제 32 류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 및 기타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시, 퍼티와 기타 매스틱, 잉크**	
3201	식물성 유연엑스, 탄닌과 그들의 염 · 에테르 · 에스테르 및 기타 유도체	
3201.10	퀘브라쵸 엑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1.20	왓틀엑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7	안료색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9	기타(소호 제 3204.11 호부터 소호 제 3204.19 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착색제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3204.11 호부터 제 3204.17 호까지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20	합성유기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합성유기물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204.11	분산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2	산성염료(금속염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를 기제로 한 조제품, 매염염료 및 이를 기제로 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3	염기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4	직접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5	건염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6	반응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상일 것
3205.00	레이크안료,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	기타 착색제, 조제품(제 3203 호 · 제 3204 호 또는 제 32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에 한한다),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206.1	이산화티타늄을 기제로 한 안료 및 그 조제품	
3206.11	건조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0 퍼센트 이상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3206.19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3206.11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20	크로뮴화합물을 기제로 한 안료 및 그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4	기타 착색제와 기타 조제품	
3206.41	군청 및 이를 기제로 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42	황아연을 기제로 한 리도폰 · 기타 안료와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50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7	조제안료 · 조제유백제 · 조제그림물감 · 법랑 · 유약 · 엔고베(슬립) · 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 · 에나멜 또는 유리공업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 · 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	
3207.10	조제안료 · 조제유백제 · 조제그림물감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8.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9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3209.10	아크릴 또는 비닐 중합체를 기제로 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9.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0.00	기타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래커 및 디스템퍼를 포함한다), 피혁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수성안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11.00	조제드라이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12	비수성 매질에 분산시킨 안료(금속분과 금속플레이크를 포함하며, 페인트·에나멜제조에 사용되는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에 한한다), 스탬프용의 박,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염료와 기타 착색제	
3212.10	스탬프용의 박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7.20	법랑과 유약·엔고베(슬립)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7.30	액상라스터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7.40	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8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3208.10	폴리에스테르를 기제로 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8.20	아크릴 또는 비닐 중합체를 기제로 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215.11	흑색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	**제 33 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3301	정유(콘크리트와 앱설루트의 것을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레지노이드, 추출한 올레오레진, 정유의 농축물(냉흡수법 또는 온침법에 의해 얻어진 것으로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로 한 것에 한한다),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	
3301.1	정유(감귤류의 것에 한한다)	
3301.12	오렌지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13	레몬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2	정유(감귤류 외의 것에 한한다)	
3301.24	박하유(멘타 피페리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25	기타 민트류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30	레지노이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2.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3	화가용·학생용·간판도장공용·정색용·유희용의 회구류 및 이와 유사한 회구류(정제의 것·튜브들이·병들이·접시들이 및 이와 유사한 형상 또는 포장의 것에 한한다)	
3213.10	세트상의 회구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14	초자용의 퍼티·접목용의 퍼티·수지시멘트·콕킹화합물과 기타 매스틱,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3214.10	초자용의 퍼티·접목용의 퍼티·수지시멘트·콕킹화합물과 기타 매스틱, 도장용 충전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4.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5	인쇄용 잉크·필기용 또는 제도용 잉크 및 기타의 잉크(농축 또는 고체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215.1	인쇄용 잉크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제 54 류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7	면도용 제품류 · 인체용 탈취제 · 목욕용 조제품 · 탈모제와 기타 조제향료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품 또는 화장용품류, 실내용 조제방취제(가향하거나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307.10	면도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7.20	인체용 탈취제 및 내발한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7.30	가향한 목욕용 염과 기타 목욕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7.4	실내용 가향 또는 방취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조제품을 포함한다)	
3307.41	아가바티와 기타 분향(焚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7.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	**제 34 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활제·인조왁스·조제왁스·광택 또는 연마조제품· 양초와 이사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 "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	
3401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봉상 · 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의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지 · 워딩 · 펠트와 부직포	
3401.1	비누 ·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봉상 · 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의 것에 한한다) 및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지 · 워딩 · 펠트와 부직포	
3401.11	화장용의 것(약용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301.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2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 및 해당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제로 한 혼합물(알코올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기타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3302.10	식품공업용 또는 음료공업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3.00	향수 및 화장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4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3304.10	입술화장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4.20	눈화장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4.30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4.9	기타	
3304.91	분말상의 것(압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4.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5	두발용 제품류	
3305.10	샴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5.20	퍼머넌트 웨이빙용 또는 스트레이트닝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5.30	헤어 래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6	구강 또는 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의 페이스트 및 분을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사로서 개별소매용으로 포장한 것(덴탈 플로스)	
3306.10	치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6.20	치간 청결용 사(덴탈 플로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5	신발 · 가구 · 마루 · 자동차 차체 · 유리 또는 금속용의 광택제 및 크림 · 연마페이스트 · 연마분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 · 도포 또는 피복한 지 · 워딩 · 펠트 · 부직포 · 셀룰라 플라스틱 또는 셀룰라 고무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 3404 호의 왁스를 제외한다)	
3405.10	신발 또는 가죽용의 광택제 · 크림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5.20	목제가구 · 마루 또는 기타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 · 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5.30	자동차 차체용의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를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5.40	조제연마페이스트 · 조제연마분 및 기타 연마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5.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6.00	양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7.00	조형용 페이스트(아동오락용의 것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재료(세트의 것 · 소매용 포장의 것 또는 판상, 말굽상, 봉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플라스터(소석고 또는 황산칼슘제의 것에 한한다)를 기제로 한 기타 치과용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5	**제 35 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효소**	
3501	카세인 · 카세인산염과 기타 카세인 유도체, 카세인글루	
3501.10	카세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40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1.20	기타 형상의 비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1.30	피부 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조제계면활성제 · 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 3401 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3402.1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402.11	음이온성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2.12	양이온성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2.13	비이온성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2.20	소매용으로 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3	조제윤활유(윤활제를 기제로 한 조제절삭제 · 볼트 또는 너트방출제 · 방청제 또는 부식방지제 및 이형조제품을 포함한다)와 방직용 재료 · 가죽 · 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오일링처리 또는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70 퍼센트 이상인 것을 기제로 한 조제품을 제외한다)	
3403.1	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는 것	
3403.11	방직용 재료 · 가죽 · 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3.9	기타	
3403.91	방직용 재료 · 가죽 · 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4	인조왁스와 조제왁스	
3404.2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501.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0 퍼센트를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알부민산염과 기타 알부민 유도체	
3502.1	난백	
3502.11	건조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2.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2.20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2.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3.00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 기타 동물성글루(제 3501 호의 카세인글루를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4.00	펩톤과 그들의 유도체,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하이드파우더(크롬명반을 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5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예 :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 · 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	
3505.10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5.20	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6	조제글루와 기타 조제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 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3506.10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 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503 호 또는 소호 제 3501.90 호는 제외한다)
3506.9	기타	
3506.91	제 3901 호부터 제 3913 호까지의 폴리머 또는 고무를 기제로 한 접착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507	효소,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효소	
3507.10	레네트와 이들의 농축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6	**제 36 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3601.00	화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602.00	폭약(화약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603.00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604	불꽃제품 · 신호용 조명탄 · 레인로켓 · 안개 신호용품 및 기타 화공품	
3604.10	불꽃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6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605.00	성냥(제 3604 호의 화공품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606	페로세륨 및 기타 발화성 합금(형상여하를 불문한다), 이 류의 주 제 2 호의 가연성 재료의 제품	
3606.10	끽연용 라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 또는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에 넣어진 액체연료 또는 액화가스연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6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	**제 37 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3701	평면상 사진플레이트 및 평면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지제 · 판지제 또는 직물제를 제외한다), 평면상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701.10	엑스선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702 호 또는 제 3703 호는 제외한다)
3701.2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702 호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제외한다)
3702.4	기타 필름(구멍이 없는 것으로서 폭이 10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3702.41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701 호 또는 제 3703 호는 제외한다)
3702.42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를 초과하는 것(천연색 사진용의 것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701 호 또는 제 3703 호는 제외한다)
3702.43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701 호 또는 제 3703 호는 제외한다)
3702.44	폭이 105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6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701 호 또는 제 3703 호는 제외한다)
3702.5	기타의 필름[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3702.52	폭이 16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701 호 또는 제 3703 호는 제외한다)
3702.53	폭이 16 밀리미터 초과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701 호 또는 제 3703 호는 제외한다)
3702.54	폭이 16 밀리미터 초과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701 호 또는 제 3703 호는 제외한다)
3702.55	폭이 16 밀리미터 초과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701 호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제 3703 호는 제외한다)
3701.30	기타의 플레이트와 필름(각 변의 길이가 25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702 호 또는 제 3703 호는 제외한다)
3701.9	기타	
3701.91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702 호 또는 제 3703 호는 제외한다)
37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702 호 또는 제 3703 호는 제외한다)
3702	롤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지제·판지제 또는 직물제를 제외한다) 및 롤상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702.10	엑스선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701 호 또는 제 3703 호는 제외한다)
3702.3	기타 필름(구멍이 없는 것으로서 폭이 105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3702.31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701 호 또는 제 3703 호는 제외한다)
3702.32	기타(할로겐화은 에멀젼으로 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701 호 또는 제 3703 호는 제외한다)
370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701 호 또는 제 3703 호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705	사진플레이트 및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에 한하며, 영화용 필름을 제외한다)	
3705.10	오프셋 복사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6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에 한하며, 사운드트랙이 있는 것인지 또는 사운드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706.10	폭이 35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7	사진용의 화학조제품(바니시·글루·접착제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제외한다), 사진용의 단일물품(일정량으로 소분하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	
3707.10	감광유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7.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	**제 38 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3801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 또는 반콜로이드흑연, 흑연 또는 기타 탄소를 기제로 한 조제품(페이스트상·블록상·판상 또는 기타 반제품의 것에 한한다)	
3801.10	인조흑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1.20	콜로이드흑연 또는 반콜로이드흑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1.3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 및 노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1.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2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수탄(폐수탄을 포함한다)	
3802.10	활성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3.00	토울오일(정제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4.00	목재펄프 제조시 생기는 폐액(농축 또는 당류를 제거하거나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리그닌 술폰산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제 3703 호는 제외한다)
3702.56	폭이 3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701 호 또는 제 3703 호는 제외한다)
3702.9	기타	
3702.96	폭이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701 호 또는 제 3703 호는 제외한다)
3702.97	폭이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초과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701 호 또는 제 3703 호는 제외한다)
3702.98	폭이 3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701 호 또는 제 3703 호는 제외한다)
3703	사진인화지·판지 및 직물(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703.10	롤상의 것(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701 호 또는 제 3702 호는 제외한다)
3703.20	기타[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701 호 또는 제 3702 호는 제외한다)
37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701 호 또는 제 3702 호는 제외한다)
3704.00	사진플레이트·필름·인화지·판지 및 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포함하나, 제 3803 호의 토올오일을 제외한다)	
3805	검테레빈유 · 우드테레빈유 또는 황산테레빈유 및 기타 테르펜계유(증류 또는 기타 방법에 따라 침엽수에서 얻은 것에 한한다), 조상의 디펜틴, 아황산테레빈과 기타 조상의 파라시멘, 파인유(주성분이 알파테르피네올인 것에 한한다)	
3805.10	검테레빈유 · 우드테레빈유 또는 황산테레빈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6	로진과 수지산 및 이들의 유도체, 로진스프릿과 로진유, 런검	
3806.10	로진과 수지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6.20	로진염, 수지산염 또는 로진 또는 수지산 유도체의 염(로진 부가물의 염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6.30	에스테르 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6.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7.00	목타르 · 목타르유 · 목크레오소트, 목나프타, 식물성피치, 브루어피치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 · 수지산 또는 식물성피치를 기제로 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8	살충제 · 살서제(취약) · 살균제 · 제초제 · 발아억제제 · 식물성장조절제 · 소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 · 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 · 심지 · 양초 및 파리잡이 끈끈이)에 한한다]	
3808.50	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의 물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유효성분 중량의 50 퍼센트 이상이 원산지물품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8.9	기타	
3808.91	살충제	6 단위 세번변경기준(유효성분 중량의 50 퍼센트 이상이 원산지물품인 경우에 한한다)
3808.92	살균제	6 단위 세번변경기준(유효성분 중량의 50 퍼센트 이상이 원산지물품인 경우에 한한다)
3808.93	제초제, 발아억제제 및 식물성장조절제	6 단위 세번변경기준(유효성분 중량의 최소 50 퍼센트 이상이 원산지물품인 경우에 한한다)
3808.94	소독제	6 단위 세번변경기준(유효성분 중량의 최소 50 퍼센트 이상이 원산지물품인 경우에 한한다)
3808.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유효성분 중량의 최소 50 퍼센트 이상이 원산지물품인 경우에 한한다)
3809	완성가공제 · 염색촉진용 또는 염료고착용의 염색캐리어 · 드레싱 및 매염제와 같은 기타의 물품과 조제품(섬유공업 · 제지공업 · 피혁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809.10	전분질을 기제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9.9	기타	
3809.91	섬유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9.92	제지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것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3809.93	피혁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0	금속표면처리용의 침지조제품, 납붙임·땜질 또는 용접용의 용제와 기타 보조 조제품, 납붙임·땜질 또는 용접용의 분말과 페이스트로서 금속과 기타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의 전극 또는 용접봉의 코어 또는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3810.1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조제품, 납붙임, 땜질용 또는 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로서 금속과 기타 재료로 조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1	안티녹제·산화억제제·검화억제제·점도향상제·부식방지제와 기타 조제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 또는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기타 액체용의 것에 한한다]	
3811.1	안티녹제	
3811.11	납화화물을 기제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1.2	윤활유 첨가제	
3811.21	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2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 조제품과 기타 복합안정제	
3812.10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2.20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2.30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 조제품과 기타 복합안정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3.00	소화기용의 조제품과 장전물, 장전된 소화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4.00	유기혼합용제와 신나(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제한 페인트 제거제 또는 바니시 제거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5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 및 촉매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815.1	서포트된 촉매	
3815.11	활성물질로서 니켈 또는 니켈화합물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5.12	활성물질로서 귀금속 또는 귀금속화합물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6.00	내화시멘트·내화모르타르·내화콘크리트 및 이와 유사한 혼합물(제 3801 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7.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 2707 호 또는 제 2902 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8.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원소(디스크상·웨이퍼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9.00	유압제동액과 기타 조제유압전동액(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70 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0.00	부동조제품 및 조제제빙액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1.00	미생물(바이러스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 또는 동물세포의 성장 또는 보존을 위한 조제배양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2.00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 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 3002 호 또는 제 3006 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3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3823.1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3823.11	스테아르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3.12	올레인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3.13	톨유 지방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3.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823.70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10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30	응집하지 아니한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40	시멘트용·모르타르용 또는 콘크리트용의 조제첨가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50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60	솔비톨(소호 제2905.4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	메탄, 에탄 또는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가지는 혼합물	
3824.71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는 것[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2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또는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을 함유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3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4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의 함유 여부는 불문하지만,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5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6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7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8	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탄소(CFCs) 또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8	옥시란(산화에틸렌),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혼합물과 조제품	
3824.81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824.82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83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5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따로 분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기타 폐기물	
3825.10	생활폐기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5.20	하수 찌꺼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5.30	임상폐기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5.4	폐 유기용제	
3825.41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5.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5.50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및 부동액 폐기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5.6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기타 폐기물	
3825.61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5.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6.00	바이오디젤 및 그 혼합물(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70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1.1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1.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1.3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1.90	기타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3902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2.10	폴리프로필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2.20	폴리이소부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2.30	프로필렌 공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3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3.1	폴리스티렌	
3903.11	발포성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3.20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SAN) 공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3.3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공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	염화비닐의 중합체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4.1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2	기타 폴리(염화비닐)	
3904.21	가소화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22	가소화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30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40	기타 염화비닐 공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50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6	플루오르 중합체	
3904.61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69	기타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39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5	초산비닐의 중합체 또는 기타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기타 비닐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5.1	폴리(초산비닐)	
3905.12	물에 분산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5.2	초산비닐 공중합체	
3905.21	물에 분산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5.30	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되지 아니한 초산기(基)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5.9	기타	
3905.91	공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6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6.10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	폴리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7.10	폴리아세탈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20	기타 폴리에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30	에폭시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40	폴리카보네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50	알키드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6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907.70	폴리(락트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9	기타 폴리에스테르	
3907.91	불포화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8	폴리아미드(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8.10	폴리아미드 -6, -11, -12, -6,6, -6,9, -6,10 또는 -6,12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9	아미노수지 · 페놀수지 및 폴리우레탄(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9.10	요소수지, 티오요소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9.20	멜라민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9.30	기타 아미노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9.40	페놀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9.50	폴리우레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0.00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1	석유수지 · 쿠마론-인덴수지 · 폴리테르펜 · 폴리술파이드 · 폴리술폰 및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911.10	석유수지 · 쿠마론 · 인덴 또는 쿠마론-인덴수지 및 폴리테르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2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912.1	초산셀룰로오스	
3912.11	가소화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2.12	가소화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2.20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2.3	셀룰로오스 에테르	
3912.31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와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3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913.10	알긴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4.00	이온교환수지(제 3901 호부터 제 3913 호까지의 중합체를 기제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5	플라스틱의 웨이스트 · 페어링과 스크랩	
3915.1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5.2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5.3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5.90	기타 플라스틱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6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봉 · 스틱 및 형재(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3916.1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6.2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6.90	기타 플라스틱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	플라스틱의 관 · 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 조인트 · 엘보 · 플랜지)	
3917.10	경화 단백질 또는 셀룰로오스 물질의 인조거트(소시지케이싱)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2	경질의 관 · 파이프 및 호스	
3917.21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22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6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3917.23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29	기타 플라스틱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3	기타 관 · 파이프 및 호스	
3917.31	연질의 관 · 파이프 및 호스[파열압(破裂壓)이 27.6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32	기타(연결구류가 없는 것에 한하며, 기타 재료로 보강 또는 결합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33	기타(연결구류가 있는 것에 한하며, 기타 재료로 보강 또는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40	연결구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8	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접착성 유무를 불문하며,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에 한한다). 이 류의 주 제 9 호의 플라스틱제의 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3918.1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8.90	기타 플라스틱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9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 · 쉬트 · 필름 · 박 · 테이프 ·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3919.10	롤상의 것(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 쉬트 · 필름 · 박 및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 · 적층 ·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920.1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20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3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4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3920.43	가소제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 퍼센트 이상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49	기타	6 단위
3920.5	아크릴 중합체의 것	
3920.51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6	폴리카보네이트 · 알키드수지 · 폴리아릴 에스테르 또는 기타 폴리에스테르의 것	
3920.61	폴리카보네이트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6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6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69	기타 폴리에스테르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7	셀룰로오스 또는 그 화학적 유도체의 것	
3920.71	재생셀룰로오스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73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79	기타 셀룰로오스유도체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9	기타 플라스틱의 것	
3920.91	폴리(비닐 부티랄)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92	폴리아미드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93	아미노수지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94	페놀수지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99	기타 플라스틱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1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 쉬트 · 필름 · 박 및 스트립	
3921.1	셀룰라	
3921.11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1.12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1.13	폴리우레탄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3925.30	셔터 · 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6	플라스틱제의 기타 물품 및 제 3901 호부터 제 3914 호까지의 기타 재료의 물품	
3926.10	사무용품 또는 학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6.20	의류 및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6.30	가구·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부착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6.40	소상 및 기타 장식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	**제 40 류 고무와 그 제품**	
4001	천연고무 · 발라타 · 구타페르카 · 구아울 · 치클 및 이와 유사한 천연검(일차제품이거나 판 · 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4001.10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1.2	천연고무(기타 형상의 것에 한한다)	
4001.21	스모크드 쉬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1.22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1.30	발라타 · 구타페르카 · 구아울 · 치클 및 이와 유사한 천연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일차제품 · 판 · 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제 4001 호의 물품과 이 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 · 판 · 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4002.1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 카르복시화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XSBR)	
4002.11	라텍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20	부타디엔 고무(BR)	6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921.14	재생셀룰로오스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1.19	기타 플라스틱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1.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2	플라스틱제의 목욕통 · 샤워통 · 설거지통 · 세면기 · 비데 · 화장실용 팬 · 변기용 시트와 커버 · 수세용 물탱크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3922.10	목욕통 · 샤워통 · 설거지통과 세면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2.20	변기용 시트와 커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3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 뚜껑 · 마개 · 캡 및 기타 마개류	
3923.10	상자 · 케이스 · 바구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3.2	색과 백(콘을 포함한다)	
3923.21	에틸렌 중합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3.29	기타 플라스틱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3.30	카보이병 · 병 · 플라스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3.40	스풀 · 콥 · 보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3.50	뚜껑 · 마개 · 캡 및 기타 마개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4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 · 주방용품 · 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	
3924.1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5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925.10	저장기 · 탱크 · 배트 및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5.20	문 · 창과 그들의 문틀 및 문지방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3.00	재생고무(일차제품 · 판 · 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4.00	고무의 웨이스트 · 페어링 및 스크랩(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들의 분 및 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5	가황하지 아니한 배합고무(일차제품 · 판 · 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4005.10	카본블랙 또는 실리카와 배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5.20	용액, 분산액(소호 제 4005.10 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5.9	기타	
4005.91	판 · 쉬트 및 스트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6	가황하지 아니한 고무의 기타 형상(예: 봉 · 관 및 형재) 및 제품(예: 디스크 및 링)	
4006.10	고무타이어 재생용의 "캐멀-백" 스트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7.00	고무사와 고무끈(가황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8	고무제의 판 · 쉬트 · 스트립 · 봉 및 형재(가황한 것에 한하며, 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	
4008.1	셀룰라 고무의 것	
4008.11	판 · 쉬트 및 스트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8.2	셀룰라 고무 외의 것	
4008.21	판 · 쉬트 및 스트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8.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9	고무제의 관 · 파이프 및 호스(가황한 것에 한하고, 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하며, 조인트 · 엘보 · 플랜지 등 연결구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4002.3	이소부텐-이소프렌(부틸)고무(IIR), 할로-이소부텐-이소프렌고무(CIIR 또는 BIIR)	
4002.31	이소부텐-이소프렌 고무(부틸 고무)(IIR)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4	클로로프렌(클로로부타디엔) 고무(CR)	
4002.41	라텍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5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4002.51	라텍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60	이소프렌 고무(IR)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70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EPDM)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80	제 4001 호의 물품과 이 호의 물품과의 혼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2.9	기타	
4002.91	라텍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09.1	기타 재료로 보강 또는 달리 결합되지 아니한 것	
4009.1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9.1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9.2	금속으로만 보강 또는 달리 결합된 것	
4009.2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9.2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9.3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 또는 달리 결합된 것	
4009.3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9.3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9.4	기타 재료로 보강 또는 달리 결합된 것	
4009.4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9.4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	고무제의 컨베이어용 또는 전동용의 벨트 또는 벨팅(가황한 것에 한한다)	
4010.1	컨베이어용 벨트 또는 벨팅	
4010.11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12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3	전동용 벨트 또는 벨팅	
4010.31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 초과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32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 초과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33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 초과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34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 초과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35	엔드리스 싱크러너스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 초과 150 센티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36	엔드리스 싱크러너스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 센티미터 초과 198 센티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신품에 한한다)	
4011.10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20	버스용 또는 화물차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30	항공기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40	모터싸이클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50	자전거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6	기타("헤링본" 또는 이와 유사한 트레드가 있는 것에 한한다)	
4011.61	농경용 또는 임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62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63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9	기타	
4011.92	농경용 또는 임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93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94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2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재생품 및 중고품에 한한다), 고무제의 솔리드 또는 쿠션타이어 · 타이어트래드 및 타이어플랩	
4012.1	재생타이어	
4012.11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2.12	버스용 또는 화물차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4016.95	기타 팽창성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7.00	경질고무(예 : 에보나이트, 각종 형상의 것으로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와 그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8 부 원피·가죽·모피 및 이들의 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제 41 류-제 43 류)	
41	**제 41 류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4101	소(버팔로를 포함한다) 또는 마속동물의 원피(생 것 · 염장한 것 · 건조한 것 · 석회처리한 것 · 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에 한하고, 유연처리 · 파치먼트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탈모하거나 스플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101.20	스플릿하지 아니한 전신원피(단순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8 킬로그램 이하, 염처리 후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 또는 생 것 · 습식염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하였을 때의 중량이 16 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1.50	전신원피(16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1.90	기타(버트, 벤드 및 벨리를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2	면양 또는 어린 양의 원피(생 것 · 염장한 것 · 건조한 것 · 석회처리한 것 · 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에 한하고, 유연처리 · 파치먼트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하며, 탈모하지 아니하거나 스플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류의 주 제 1 호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102.10	탈모하지 아니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2.2	탈모한 것	
4102.21	산처리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2.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3	기타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에 한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하며, 탈모하거나 스플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류의 주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12.13	항공기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2.20	중고 공기타이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3	고무제의 이너튜브	
4013.10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과 버스 또는 화물차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3.20	자전거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4	위생용품 또는 의료용품(젖꼭지를 포함하며, 경질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제의 것에 한하고, 경질고무제의 연결구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4014.10	콘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5	의류와 의류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제의 것에 한하며, 용도를 불문한다)	
4015.1	장갑, 벙어리장갑	
4015.11	외과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	
4016.10	셀룰라 고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9	기타	
4016.91	바닥깔개와 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92	지우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93	개스킷 · 와셔 및 기타 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94	보트 또는 도크팬더(팽창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제 1 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103.20	파충류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3.30	돼지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4	소(버팔로를 포함한다) 또는 마속동물의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플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4104.1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4104.11	스플릿하지 아니한 풀 그레인, 그레인 스플릿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4.4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4104.41	스플릿하지 아니한 풀 그레인, 그레인 스플릿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4.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4104.41 호는 제외한다)
4105	면양이나 어린 양의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플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4105.10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5.30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6	기타 동물의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플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4106.2	산양의 것	
4106.21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6.22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6.3	돼지의 것	
4106.31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6.32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6 단위
4106.40	파충류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6.9	기타	
4106.91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6.92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7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한 소(버팔로를 포함한다) 또는 마속동물의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플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 4114 호의 가죽을 제외한다)	
4107.1	전신원피	
4107.11	스플릿하지 아니한 풀 그레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7.12	그레인 스플릿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7.9	기타(반신의 것을 포함한다)	
4107.91	스플릿하지 아니한 풀 그레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7.92	그레인 스플릿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2.00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플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 4114 호의 가죽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3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기타 동물의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플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 4114 호의 가죽을 제외한다)	
4113.10	산양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3.20	돼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3.30	파충류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114	세무가죽(콤비네이션 세무가죽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 메탈라이즈드 레더	
4114.10	세무가죽(콤비네이션 세무가죽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4.20	페이턴트 레더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 메탈라이즈드 레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5	콤퍼지션 레더(가죽 또는 가죽섬유를 기제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슬래브상·쉬트상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의 페어링과 기타의 웨이스트(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죽의 더스트와 분	
4115.10	콤퍼지션 레더(가죽 또는 가죽섬유를 기제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슬래브상·쉬트상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5.20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의 페어링과 기타의 웨이스트(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죽의 더스트와 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2	**제 42 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의 거트의 제품(누에의 거트는 제외한다)**	
4201.00	동물용의 마구(고삐줄·끈·무릎받이·재갈·안장용 방석·안장에 다는 주머니·개용 코트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권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플라스틱의 쉬트·방직용 섬유제·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케이스·담배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가방·병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	
4202.1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 및 이와 유사한 용기	
4202.11	외부표면이 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제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1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2	핸드백(어깨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	
4202.21	외부표면이 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제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22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3	통상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어다니는 물품	
4202.31	외부표면이 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제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32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제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9	기타	
4202.91	외부표면이 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제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9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제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3	의류와 의류부속품(가죽제 또는 콤퍼지션 레더제의 것에 한한다)	
4203.10	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3.2	장갑류	
4203.21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3.30	벨트와 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3.40	기타의 의류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5.00	기타의 가죽제품 또는 콤퍼지션 레더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6.00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골드비터 스킨·방광 또는 건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	**제 43 류 모피와 인조모피, 이들의 제품**	
4301	생모피(모피사용에 적합한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 4101 호·제 4102 호 또는 제 4103 호에 해당하는 원피를 제외한다)	
4301.10	밍크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것에 한한다)	세번변경기준
4401.2	침상 또는 삭편상의 목재	
4401.21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1.22	활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1.3	톱밥 및 목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통나무·브리케트·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1.31	목재 펠리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1.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2	목탄(쉘 또는 너트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2.10	대나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3	원목[껍질 또는 변재(邊材)를 벗긴 것인지 또는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3.10	페인트, 착색, 크레오소트 또는 기타 방부제로 처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3.20	기타(침엽수류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3.4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열대산 목재의 것에 한한다)	
4403.41	다크레드메란티, 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3.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3.9	기타	
4403.91	참나무(코커스종)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3.92	너도밤나무(파구스종)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4	후프우드, 쪼갠말뚝, 뾰족하게 만든 목재의 말뚝류(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을 제외한다), 목재의 봉(지팡이·산류·공구의 자루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깎은 것에 한하며, 선반가공, 휨 가공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칩우드 및 이와 유사한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세번변경기준
4301.3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브로드테일·카라쿨·페르시아 및 이와 유사한 어린 양·인도·중국·몽고 또는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1.60	여우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1.80	기타의 모피(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1.90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2	모피(유연처리 또는 드레스가공한 것으로서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고, 조합하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 재료를 가하지 아니하고 조합한 것에 한하며, 제 4303 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4302.1	전신모피(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4302.11	밍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2.20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품(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2.30	전신모피 및 그 조각 또는 절단품(조합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3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모피제품	
4303.10	모피의류와 모피의류의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4.00	인조모피와 그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9 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제 44 류-제 46 류)	
44	**제 44 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4401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가지, 다발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칩상 또는 삭편상의 목재, 톱밥·목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통나무·브리케트·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1.10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가지, 다발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404.10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4.20	활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5.00	목모, 목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6	철도 또는 궤도용 침목	
4406.10	주약처리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대패질 ·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7.10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2	열대산 목재의 것(이 류 소호주 제 2 호의 것에 한한다)	
4407.21	마호가니(스웨테니아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22	비롤라 · 임부아 및 발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25	다크레드메란티 · 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26	화이트라왕 · 화이트메란티 · 화이트세라야 · 옐로메란티 및 아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27	사팰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28	이로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9	기타	
4407.91	참나무(코커스종)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92	너도밤나무(파구스종)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93	단풍나무(아세르종)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94	체리나무(프루누스종)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95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종)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4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8	베니어용 단판(적층목재품을 평삭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 또는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 단판 및 기타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대패질 ·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8.10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8.3	열대산 목재의 것(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것에 한한다)	
4408.31	다크레드메란티, 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8.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9	목재(미조립의 쪽마루판용 스트립과 프리즈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 · 마구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 · 홈가공 · 은촉이음가공 · 경사이음가공 · 브이형이음가공 · 구슬형가공 · 주형가공 · 원형가공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 ·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409.10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9.2	활엽수류	
4409.21	대나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9.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0	파티클보드, 배향성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및 이와 유사한 보드(예: 웨이퍼보드)(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재료의 것에 한하며, 수지 또는 기타의 유기결합제로 응결시킨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10.1	목재의 것	
4410.11	파티클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0.12	배향성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411	섬유판(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재료의 것에 한하며, 수지 또는 기타의 유기물질로 접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11.1	중밀도 섬유판(MDF)	
4411.12	두께가 5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1.13	두께가 5 밀리미터 초과 9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1.14	두께가 9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1.9	기타	
4411.92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8 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1.93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5 그램 초과 0.8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1.94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5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2	합판·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	
4412.10	대나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2.3	기타 합판(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의 목재쉬트만으로 구성된 것에 한하며, 대나무제의 것은 제외한다)	
4412.31	최소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2.32	기타(최소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활엽수류 목재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2.9	기타	
4412.94	블록보드, 라민보드 및 배튼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3.00	고밀도화 목재(블록상·플레이트상·스트립상 또는 프로파일형상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4.00	목재의 그림틀·사진틀·거울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5	목재의 케이스·상자·크레이트·드럼 및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목제의 케이블드럼, 목재의 페렛·박스페렛 및 기타의 깔판류, 목재의 페렛칼러	
4415.10	케이스·상자·크레이트·드럼 및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블드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5.20	페렛, 박스페렛 및 기타의 깔판류, 페렛칼러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4416.00	목재의 통·배럴·배트·텁 및 기타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 및 준재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7.00	목재의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 또는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 신발의 목제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	건축용 목재건구와 목공품(셀룰라우드패널·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지붕이는 판자를 포함한다)	
4418.10	창, 프랑스 창 및 그들의 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20	문·문틀 및 문지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40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의 거푸집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50	지붕이는 판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60	기둥 및 들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7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	
4418.71	모자이크 마루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72	기타(다층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7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9.00	목재의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20	마르퀘트리 목제품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용품 또는 칼붙이 및 이와 유사한 제품용의 목재 상자와 용기, 목재의 조상과 기타 장식품, 제 94 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목재 가구	
4420.10	목재의 조상 및 기타의 장식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2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21	기타 목제품	
4421.10	옷걸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5	**제 45 류 코르크와 그 제품**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46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2	농세공품·지조세공물 및 기타의 제품(조물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 또는 제 4601 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수세미제품	
4602.1	식물성 재료의 것	
4602.11	대나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2.12	등나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 부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지와 판지 및 이들의 제품(제 47 류-제 49 류)	
47	**제 47 류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4701.00	기계목재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2.00	화학목재펄프(용해용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3	화학목재펄프(소다펄프 또는 황산펄프에 한하며, 용해용의 것을 제외한다)	
4703.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703.11	침엽수류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3.19	활엽수류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3.2	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4703.21	침엽수류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3.29	활엽수류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4	화학목재펄프(아황산펄프에 한하며, 용해용의 것을 제외한다)	
4704.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704.11	침엽수류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4.19	활엽수류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501	천연코르크(조상의 것 또는 단순히 가공한 것에 한한다), 코르크의 웨이스트, 파쇄·입상 또는 분쇄한 코르크	
4501.10	천연코르크(조상의 것 또는 단순히 가공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5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502.00	천연코르크[외피를 제거한 것·거칠게 각을 만든 것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상·판상·쉬트상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하고, 각이 예리한 마개용의 블랭크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503	천연코르크의 제품	
4503.10	마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5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504	응집코르크(응집제를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응집코르크의 제품	
4504.10	블록·판·쉬트 및 스트립, 타일(형상을 불문한다), 솔리드실린더(디스크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5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6	**제 46 류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4601	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조물재료·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쉬트상의 것에 한하며, 매트류·발 등 최종 제품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601.2	매트류 및 발(식물성 재료의 것에 한한다)	
4601.21	대나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1.22	등나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1.9	기타	
4601.92	대나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1.93	등나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1.94	기타 식물성 재료의 것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704.2	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4704.21	침엽수류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4.29	활엽수류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5.00	기계적 및 화학적 펄핑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6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4706.10	면린터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6.20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6.30	기타(대나무제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6.9	기타	
4706.91	기계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6.92	화학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6.93	기계공정과 화학공정의 결합으로 얻어진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7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4707.10	표백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 또는 판지나 파형지 또는 판지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7.20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기타의 지 또는 판지제의 것(전체를 착색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7.30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 등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지 또는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7.90	기타(선별하지 아니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	**제 48 류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의 제품**	
4801.00	신문용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	도포하지 아니한 지와 판지(필기용·인쇄용 또는 기타 그래픽용의 것에 한한다), 천공되지 아니한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지[제 4801 호 또는 제 4803 호의 것을 제외하며, 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상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수제지와 판지	
4802.10	수제지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20	사진감광성, 열 감응성 또는 전자 감광성 지 또는 판지용 기제로 사용되는 지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40	벽지용의 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5	기타의 지와 판지(기계공정 또는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를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그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10 퍼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4802.5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55	롤상의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56	쉬트상의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이고,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이 43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다른 한 변은 297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57	기타의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58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6	기타의 지와 판지(기계공정 또는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량이 전섬유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802.61	롤상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62	쉬트상의 것으로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이 43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다른 한 변은 297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3.00	화장지 또는 안면용 티슈스톡·타월 또는 냅킨스톡 및 이와 유사한 가정용 또는 위생용의 지·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축유한 것·압형한 것·천공한 것·표면착색한 것·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롤상의 것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	도포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와 판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하며, 제 4802 호 또는 제 4803 호의 것을 제외한다)	
4804.1	크라프트 라이너	
4804.1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2	지대용 크라프트지	
4804.2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805.40	여과지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50	펠트지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9	기타	
4805.9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9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초과 225 그램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93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25 그램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6	황산지 · 내지지 · 트래싱지 · 그라신지와 기타의 투명광택지 또는 반투명 광택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4806.10	황산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6.20	내지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6.30	트래싱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6.40	그라신지와 기타의 투명광택지 또는 반투명광택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7.00	겹붙인 지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한 것을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8	파형(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축유 · 압형 또는 천공한 지와 판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하며, 제 4803 호의 것을 제외한다)	
4808.10	파형의 지와 판지(천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8.40	크라프트지(축유한 것으로서 압형 또는 천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4804 호는 제외한다)
48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9	카본지 · 셀프복사지 및 기타의 복사 또는 전사지(등사원지 또는 오프세트플레이트로 사용하는 도포지 또는 침투지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4809.20	셀프복사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9.90	기타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48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3	기타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4804.3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4	기타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고 225 그램 미만인 것에 한한다)	
4804.4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42	소지상태에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9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5	기타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 제곱미터당 중량이 225 그램 이상인 것에 한한다)	
4804.5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52	소지상태에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9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	기타의 도포하지 아니한 지와 판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하며,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 이상의 가공이나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805.1	후로팅지	
4805.11	반화학 후로팅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12	스트로 후로팅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2	테스트라이너(재생라이너판)	
4805.2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25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30	아황산포장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4810	한면 또는 양면을 도포한 지와 판지[결합재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카오린(차이나 클레이) 또는 기타 무기물질로 도포한 것(기타 다른 물질로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표면착색·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상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4810.1	필기용·인쇄용 또는 기타 그래픽용의 지와 판지(기계공정 또는 화학-기계공정에 의한 섬유를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그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10 퍼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4810.13	롤상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14	쉬트상의 것으로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이 43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다른 한 변은 297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2	필기용·인쇄용 또는 기타 그래픽용의 지와 판지(기계공정 또는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810.22	경량(輕量)의 도포한 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3	크라프트지와 판지(필기용·인쇄용 또는 기타 그래픽용의 것을 제외한다)	
4810.31	소지상태에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9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32	소지상태에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9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9	기타의 지와 판지	
4810.92	여러 겹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1	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상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쉬트상의 것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것에 한하며, 제 4803 호·제 4809 호 또는 제 4810 호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다)	
4811.10	타르·역청물질 또는 아스팔트를 가한 지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1.4	접착지와 판지	
4811.41	셀프접착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1.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1.5	플라스틱으로 도포·침투 또는 피복한 지와 판지(접착제를 제외한다)	
4811.51	표백한 것(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1.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1.60	왁스·파라핀왁스·스테아린·유 또는 글리세롤을 도포·침투 또는 피복한 지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1.90	기타의 지와 판지·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2.00	제지용 펄프제의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및 필터플레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3	궐련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한 것인지 또는 소책자상 또는 튜브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813.10	소책자상 또는 튜브상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3.20	폭이 5 센티미터 이하의 롤상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4	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 창용 투명지	
4814.20	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표면에 그레인한 것·압형한 것·착색한 것·디자인인쇄한 것 또는 기타 모양으로 장식한 플라스틱층으로 도포 또는 피복한 지로 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6	카본지·셀프복사지 및 기타의 복사 또는 전사지(제 4809 호의 것을 제외한다), 지제의 등사원지 및 오프세트플레이트(상자에 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816.20	셀프복사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4809 호는 제외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4819.50	기타의 포장용기(레코드 스리브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9.60	서류상자 · 서류받침 · 보관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 · 상점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0	지와 판지제의 장부 · 회계부 · 노트북 · 주문장 · 영수장 · 편지지철 · 메모철 · 일기장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연습장 · 흡취지장 · 바인더(예: 루스리프 등) · 홀더 · 서철표지 · 각종 사무용 양식 · 삽입식 카본세트 및 기타 문구류, 견본용 또는 수집용의 앨범과 책커버	
4820.10	장부 · 회계부 · 노트북 · 주문장 · 영수장 · 편지지철 · 메모철 · 일기장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0.20	연습장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0.30	바인더(책표지를 제외한다) · 홀더 및 서철표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0.40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삽입식 카본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0.50	견본용 또는 수집용의 앨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1	지 또는 판지제의 각종 레이블(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821.10	인쇄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2	제지용 펄프 · 지 또는 판지제의 보빈 · 스풀 · 콥 및 이와 유사한 권취용품(천공 또는 경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822.10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데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3	기타의 지 · 판지 · 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특정한 크기 또는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 제지용 펄프 · 지 · 판지 ·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의 기타 제품	
4823.20	여과용의 지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4805.40 호는 제외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81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4809 호는 제외한다)
4817	지 또는 판지제의 봉투 · 봉함엽서 · 우편엽서 및 통신용 카드, 지제 또는 판지제의 상자 · 낭대 및 필기첩(안에 지제 문구류가 있는 것에 한한다)	
4817.10	봉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7.20	봉함엽서 · 우편엽서 및 통신용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7.30	지 또는 판지제의 상자 · 낭대 및 필기첩(안에 지제 문구류가 있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8	화장지 및 이와 유사한 지 ·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가정용 또는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 센티미터 이하인 롤상의 것 또는 특정의 크기나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 손수건 · 크렌싱티슈 · 타올 · 책상보 · 서비에트 · 베드시트 및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 · 위생용품 또는 병원용품 · 의류 및 의류부속품(제지용 펄프 · 지제 ·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로 만든 것에 한한다)	
4818.10	화장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8.20	손수건 · 크렌싱티슈 · 안면용 화장지 및 타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8.30	책상보 및 서비에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8.50	의류 및 의류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9	지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제의 상자 · 포장대 및 기타 포장용기와 지와 판지제의 서류상자 · 서류받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 · 상점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4819.10	지제 또는 판지제의 상자류(골판지제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9.20	지제 또는 판지제의 접는 상자류(골판지제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9.30	폭이 40 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9.40	기타 포장대(콘을 포함한다)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906.00	설계도와 도안(건축용 · 공학용 · 공업용 · 상업용 · 지형학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의 원도에 한한다), 육필책자, 이들을 감광지 및 카본지에 사진복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7.00	사용하지 아니한 우표 · 수입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 또는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에 한한다), 스탬프를 압인한 지, 지폐, 수표, 주식 · 주권 또는 채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8	전사지(디칼커매니어)	
4908.10	전사지(디칼커매니어)로서 유리화 할 수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9.00	인쇄된 엽서 또는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 · 전언용 또는 안내용의 것으로서 그림 · 봉투 또는 장식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10.00	캘린더(종류를 불문하고, 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11	기타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4911.10	광고선전물 · 상업용 카다로그 및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11.9	기타	
4911.91	서화 · 디자인 및 사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1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1 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제 50 류-제 63 류)	
50	**제 50 류** **견**	
5001.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2.00	생사(꼰 것을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3.00	견웨이스트(생사를 뽑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누에고치 · 사웨이스트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4.00	견사(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5.00	견방사(견웨이스트의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6.00	견사 · 견방사(견웨이스트의 것과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누에의 거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7	직물(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에 한한다)	
5007.10	견 노일직물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823.40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 · 쉬트 및 다이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3.6	지 또는 판지제의 쟁반 · 접시 · 플레이트 · 컵 및 이와 유사한 것	
4823.61	대나무제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3.6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3.70	제지용 펄프제의 몰드 또는 압형한 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3.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9	**제 49 류**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도면**	
4901	인쇄서적 · 소책자 · 리플릿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901.10	단매의 것(접어포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1.9	기타	
4901.91	사전 · 백과사전 및 이들의 분할 연속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2	신문 · 잡지 및 정기간행물(그림이 있는 것이거나 광고선전물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902.10	1 주에 4 회 이상 간행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3.00	아동용의 그림책 또는 습화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4.00	악보(인쇄 또는 수제의 것으로서 제본되었거나 그림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5	지도 · 해도 또는 이와 유사한 각종 차트(제본한 것 · 벽걸이용의 것 · 지형도 및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에 한한다)	
4905.10	지구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5.9	기타	
4905.91	책자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007.20	기타 직물(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의 것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007.90	기타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1	**제 51 류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 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5101	양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5101.1	그리지(플리스워시한 양모를 포함한다)	
5101.11	깎은 양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1.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1.2	탈지한 것(탄화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5101.21	깎은 양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1.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1.30	탄화처리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2	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5102.1	섬수모	
5102.11	캐시미어 산양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2.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2.20	조수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3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웨이스트(실의 웨이스트를 포함하며, 가아넷스톡을 제외한다)	
5103.10	양모 또는 섬수모의 노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3.20	양모 또는 섬수모의 기타 웨이스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3.30	조수모의 웨이스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4.00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가아넷스톡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5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하며, 코움한 단편상의 양모를 포함한다)	
5105.10	카드한 양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5.2	울톱과 기타 코움한 양모	
5105.21	코움한 양모(단편상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5.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5.3	섬수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한다)	
5105.31	캐시미어 산양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5.39	기타	2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111.2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의 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111.3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의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1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5105.40	조수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6	카드한 양모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5106.10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6.20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7	코움한 양모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5107.10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7.20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8	섬수모사(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5108.10	카드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8.20	코움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9	양모사 또는 섬수모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5109.10	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10.00	조수모사 또는 마모사(짐프한 마모사를 포함하며, 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11	직물(카드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에 한한다)	
5111.1	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5111.1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30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111.19	기타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112.3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의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1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113.00	직물(조수모 또는 마모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112	직물(코움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에 한한다)	
5112.1	양모 또는 섬모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5112.1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11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112.2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의 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	**제 52 류 면**	
5201.00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2	면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5202.10	사웨이스트(실의 웨이스트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2.9	기타	
5202.91	가아넷스톡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3.00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4	면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204.1	소매용이 아닌 것	
5204.11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4.20	소매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5205.1	단사(코움하지 아니한 섬유의 것에 한한다)	
5205.11	714.29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1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13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14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15	125 데시텍스 미만의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	단사(코움한 섬유의 것에 한한다)	
5205.21	714.29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5205.2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3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4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6	125 데시텍스 미만 106.38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번수 80 수 초과 9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7	106.38 데시텍스 미만 83.33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94 수 초과 12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8	83.33 데시텍스 미만의 것(미터식 번수 12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3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코움하지 아니한 섬유의 것에 한한다)	
5205.3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3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3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34	구성하는 단사가 191.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35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코움한 섬유의 것에 한한다)	
5205.4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6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 106.38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9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7	구성하는 단사가 106.38 데시텍스 미만 83.33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94 수 초과 12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8	구성하는 단사가 83.33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2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	면사(면의 함유량이 85 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5206.1	단사(코움하지 아니한 섬유의 것에 한한다)	
5206.11	714.29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1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13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14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15	125 데시텍스 미만의 것(미터식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2	단사(코움한 섬유의 것에 한한다)	
5206.21	714.29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2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23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24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25	125 데시텍스 미만의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3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코움하지 아니한 섬유의 것에 한한다)	
5206.3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3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3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3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35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4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코응한 섬유의 것에 한한다)	
5206.4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4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4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4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세번변경기준
5206.45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7	면사(재봉사를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5207.10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5208.1	표백하지 아니한 것	
5208.11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8.12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8.13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8.23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8.29	기타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8.3	염색한 것	
5208.31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8.19	기타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8.2	표백한 것	
5208.21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8.22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경우에 한한다)
5208.4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208.41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8.42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8.43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8.49	기타 직물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8.32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8.33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8.39	기타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9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209.1	표백하지 아니한 것	
5209.11	평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9.12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9.19	기타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8.5	날염한 것	
5208.51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8.52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8.59	기타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9.3	염색한 것	
5209.31	평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9.32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9.39	기타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9.2	표백한 것	
5209.21	평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9.22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9.29	기타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9.49	기타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9.5	날염한 것	
5209.51	평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9.52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9.4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209.41	평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9.42	데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9.43	3 올 또는 4 올의 기타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09.59	기타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0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미만이고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5210.1	표백하지 아니한 것	
5210.11	평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0.19	기타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0.2	표백한 것	
5210.21	평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0.29	기타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0.3	염색한 것	
5210.31	평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0.32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0.39	기타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0.4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210.41	평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0.49	기타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0.5	날염한 것	
5210.51	평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0.59	기타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1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미만이고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1.3	염색한 것	
5211.31	평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1.32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1.39	기타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211.1	표백하지 아니한 것	
5211.11	평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1.12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1.19	기타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1.20	표백한 것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1.49	기타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1.5	날염한 것	
5211.51	평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1.52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1.4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211.41	평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1.42	데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1.43	3 올 또는 4 올의 기타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2.13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2.14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2.15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1.59	기타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2	기타 면직물	
5212.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	
5212.1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2.12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5212.24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2.25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3	**제 53 류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지사 및 지사의 직물**	
5301	아마(생 것이거나 또는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아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5301.10	생아마 또는 침지아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1.2	쇄경(碎莖)·타마·핵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아마(방적한 것을 제외한다)	
5301.21	쇄경 또는 타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1.30	아마의 토우와 웨이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2	대마(생 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2.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을 초과하는 것	
5212.2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2.22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212.23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한한다). 대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5302.10	생대마 또는 침지대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3	황마와 기타의 방직용 인피섬유(아마 · 대마 및 라미를 제외하며, 생 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들 섬유의 토우와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5303.10	황마와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생 것 또는 침지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5.00	코코넛, 아바카(마닐라마), 라미와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생 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들 섬유의 토우 · 노일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6	아마사	
5306.10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6.20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7	제 5303 호의 황마 또는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사	
5307.10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7.20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8	기타 식물성 섬유사, 지사	
5308.10	코이어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8.20	대마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9	아마직물	
5309.1	아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의 것	
5309.1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3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309.2	아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미만의 것	
5309.2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309.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	**제 54 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	
5401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401.10	합성필라멘트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1.20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의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2.1	강력사(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에 한한다)	
5402.11	아라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2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3	텍스처드사	
5402.31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 텍스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32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 텍스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33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34	폴리프로필렌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4	기타의 사(단사로서 꼬임이 없거나 미터당 50 회 이하의 꼬임의 것에 한한다)	
5402.44	탄성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45	기타(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46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방향성이 있는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47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48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에 한한다)	2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310	제 5303 호의 황마 또는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의 직물	
5310.10	표백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3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311.00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 지사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것에 한한다)	
5404.1	모노필라멘트	
5404.11	탄성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4.12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4.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5.00	재생 또는 반합성모노필라멘트(67 데시텍스 이상의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재생 또는 반합성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시폭이 5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6.00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를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 5404 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7.10	강력사(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또는 폴리에스테르의 것에 한한다)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7.20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5402.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5	기타의 사(단사로서 미터당 꼬임이 50 회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402.51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52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5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6	기타의 사[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5402.61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62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6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	재생 또는 반합성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의 재생 또는 반합성의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3.10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의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3	기타의 사(단사)	
5403.31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꼬임이 없거나 꼬임이 미터당 120 회 이하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32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꼬임이 미터당 120 회를 초과하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33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4	기타의 사[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5403.41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42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4	합성모노필라멘트(67 데시텍스 이상의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시폭이 5 밀리미터 이하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7.30	제 11 부의 주 제 9 호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7.4	기타 직물(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5407.4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7.4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경우에 한한다)
5407.4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7.4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7.5	기타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5407.5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5 퍼센트 이상인 것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7.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7.7	기타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5407.7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7.7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5407.5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7.5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7.5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7.6	기타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5407.61	비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7.7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7.7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7.8	기타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에 한한다)	
5407.8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7.8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7.8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7.8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7.9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8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제 5405 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8.10	비스코스레이온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8.2	기타 직물(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 -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5408.2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7.9	기타 직물	
5407.9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7.9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7.9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8.3	기타 직물	
5408.3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8.3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8.3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8.2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8.2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408.2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경우에 한한다)
5408.3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	**제 55 류 인조스테이플섬유**	
5501	합성필라멘트토우	
5501.1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1.20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1.30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1.40	폴리프로필렌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2.00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토우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3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5503.1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5503.11	아라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3.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3.20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3.30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3.40	폴리프로필렌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55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4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을 제외한다)	
5504.1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5	인조섬유의 웨이스트(노일·사웨이스트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5505.10	합성섬유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5.2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6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5506.1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6.20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6.30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6.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7.0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8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508.1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8.2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5509.1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5509.1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12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5509.2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5510.12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0.20	기타의 사(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0.30	기타의 사(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0.90	기타의 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1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5511.1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1.2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1.3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2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5512.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5512.1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5509.22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3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5509.3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32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4	기타의 사(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5509.4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42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5	기타의 사(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에 한한다)	
5509.51	주로 또는 전적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52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53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6	기타의 사(아크릴 또는 모다크릴 스테이플섬유의 것에 한한다)	
5509.61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62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9	기타의 사	
5509.91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92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5510.1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5510.11	단사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3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7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5513.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5513.1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3.1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 올 또는 4 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2.2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5512.2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2.9	기타	
5512.9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3.2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3.29	기타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3.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513.3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3.1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3.19	기타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3.2	염색한 것	
5513.2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70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514.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5514.1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4.1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 올 또는 4 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4.19	기타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경우에 한한다)
5513.39	기타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3.4	날염한 것	
5513.4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3.49	기타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4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4.3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4.4	날염한 것	
5514.4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4.4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 올 또는 4 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5514.2	염색한 것	
5514.2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4.2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 올 또는 4 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4.2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4.29	기타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5.12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5.13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4.4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4.49	기타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5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5515.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5515.11	주로 또는 전적으로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5.9	기타 직물	
5515.91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6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5516.1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5516.1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5.2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 스테이플섬유의 것	
5515.21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5.22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경우에 한한다)
5516.2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미만인 것	
5516.2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6.2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6.2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6.1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6.1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6.1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5516.2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6.3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미만인 것	
5516.3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6.3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6.3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6.3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6.4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미만인 것	
5516.4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6.42	염색한 것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6.9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6.9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6.9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6.4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6.4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516.9	기타	
5516.9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6	**제 56 류 워딩·펠트 및 부직포, 특수사, 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5601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워딩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 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방직용 섬유의 더스트와 밀네프	
5601.2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워딩과 그 제품	
5601.2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1.2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1.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1.30	섬유의 플록과 더스트 및 밀네프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2	펠트(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602.10	니들룸펠트와 스티치 본드 섬유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2.2	기타의 펠트(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602.2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2.2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3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603.1	인조필라멘트의 것	
5603.1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603.1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초과 7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603.13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 초과 1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603.1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5603.9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604	고무사 및 고무코드(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방직용 섬유사와 제 5404 호 또는 제 5405 호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한 것에 한한다)	
5604.10	고무사와 고무코드(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5.00	금속드리사(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방직용 섬유사 또는 제 5404 호 또는 제 5405 호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스트립 또는 분상의 금속과 결합한 것 또는 금속으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6.00	짐프사와 제 5404 호 또는 제 5405 호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 것에 한하며, 제 5605 호의 것 및 짐프한 마모사는 제외한다), 셔닐사(플록상의 셔닐사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7	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엮은 것인지 또는 짠 것인지 여부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607.2	사이잘마 또는 아게부류의 기타 방직용 섬유의 것	
5607.21	포장용 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7.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7.4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의 것	
5607.41	포장용 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7.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7.50	기타 합성섬유의 것	2 단위
5603.9	기타	
5603.9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603.9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초과 7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603.93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 초과 1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5607.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8	결절한 망지(끈·코디지 또는 로프로 만든 것에 한한다),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제품으로 된 어망 및 기타 제품으로 된 망	
5608.1	인조섬유제의 것	
5608.11	제품으로 된 어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9.00	제 5404 호 또는 제 5405 호의 사·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끈, 코디지, 로프 또는 케이블의 물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7	**제 57 류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5701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결절한 것에 한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701.1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1.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직조한 것에 한하고, 터후트 또는 플록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켈렘(Kelem)", "슈맥(Schumacks)", "카라마니(Karamanie)" 및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를 포함한다)	
5702.10	"켈렘(Kelem)", "슈맥(Schumacks)", "카라마니(Karamanie)" 및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20	코코넛섬유(코이어)제의 바닥깔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3	기타(파일직물의 것에 한하며,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5702.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3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3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4	기타(파일직물의 것으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한한다)	
5702.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4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5702.4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50	기타(파일직물의 것이 아닌 것으로서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9	기타(파일직물의 것이 아닌 것으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한한다)	
5702.9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9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9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3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터후트한 것에 한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703.1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3.20	나일론 또는 폴리아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3.30	기타 인조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3.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4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펠트제의 것에 한하며, 터후트 또는 플록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704.10	타일(표면적이 최대 0.3 제곱미터인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602 호는 제외한다)
57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602 호는 제외한다)
5705.00	기타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	**제 58 류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 자수포**	
5801	파일직물 및 셔닐직물(제 5802 호 또는 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제외한다)	
5801.1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801.26	셔닐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801.27	경파일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801.3	인조섬유제의 것	
5801.31	절단하지 아니한 위(緯)파일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801.2	면제의 것	
5801.21	절단하지 아니한 위(緯)파일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801.22	절단한 코르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801.23	기타 위(緯)파일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801.37	경파일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801.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802	테리타올지 및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세폭직물은 제외한다), 터후트직물(제 57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5802.1	면제의 테리타올지 및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	
5802.1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801.32	절단한 코르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801.33	기타 위(緯)파일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801.36	셔닐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803.00	거즈(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세폭직물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4	튜울 및 기타 망직물(제직한 것 · 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한 것은 제외한다), 레이스(원단상 ·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된 것에 한하며, 제 6002 호부터 제 6006 호까지의 직물은 제외한다)	
5804.10	튜울 및 기타 망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4.2	기계제의 레이스	
5804.21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4.2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4.30	수제의 레이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5.00	고우벌린직· 플란더스직· 오버선직· 뷰바이스직 및 이와 유사한 수직의 태피스트리 및 자수의 태피스트리(예: 퍼티포인트, 십자수)(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6	세폭직물(제 5807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으로 이루어진 세폭직물(볼덕)	
5806.10	파일직물(테리타올지와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을 포함한다)과 셔닐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6.20	기타 직물(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6.3	기타 직물	
5806.3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6.3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6.3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6.40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의 세폭직물(볼덕)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7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레이블, 배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상, 스트립 또는 특정의 형상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에 한하며,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	
5807.10	직조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7.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8	원단상의 브레이드, 원단상의 장식용 트리밍(자수가 없는 것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8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802.2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테리타올지 및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802.30	터후트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5902	강력사의 타이어코드직물(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 또는 비스코스레이온의 것에 한한다)	
5902.1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2.20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3	플라스틱으로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 5902 호의 것은 제외한다)	
5903.10	폴리(염화비닐)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3.20	폴리우레탄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4	리놀륨, 방직용 섬유의 뒷면을 도포 또는 피복한 것으로 만든 바닥깔개(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904.10	리놀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5.00	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복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6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 5902 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5906.10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접착 테이프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6.9	기타	
5906.91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6.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7.00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스튜디오용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8.00	램프용, 스토브용, 라이터용, 양초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 편조 또는 편직한 것에 한한다), 백열가스 맨틀 및 백열가스 맨틀용 관상편물(침투여부를 불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9.00	방직용 섬유제의 호스 및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의 관상의	2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한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솔 품용과 이와 유사한 물품	
5808.10	브레이드(원단상의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8.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9.00	금속사의 직물과 제 5605 호의 금속드리사의 직물(의류·실내용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에 한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5810	자수천(원단상,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된 것에 한한다)	
5810.10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810.9	기타 자수포	
5810.91	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810.92	인조섬유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810.9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811.00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제 5810 호의 자수천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9	**제 59 류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5901	서적 장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 또는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트레이싱포, 회화용 캔버스, 모자 제조용에 사용되는 종류의 버크럼 및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5901.10	서적장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 또는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1.90	기타	2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물품(기타 재료제의 내장·보강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세번변경기준
5910.00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 벨트 또는 벨팅(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하며,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 또는 기타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11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이 류의 주 제 7 호에 열거된 것으로 공업용의 것에 한한다)	
5911.10	침포로 사용되는 종류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 및 펠트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 가죽 또는 기타 재료로 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및 기타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종류의 이와 유사한 직물[위빙스핀들(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직물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11.20	볼팅클로스(제품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11.3	방직용 섬유직물 및 펠트[엔드리스 또는 연결구를 갖춘 것으로서, 제지용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되는 것(예: 펄프 또는 석면-시멘트용)]	
5911.3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미만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11.3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이상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11.40	착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종류의 여과포(인모제의 것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1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	**제 60 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6001	파일 직물("룹 파일" 직물과 테리 직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001.10	"룹파일"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1.2	루푸파일 직물	
6001.21	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1.22	인조섬유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1.2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1.9	기타	
6001.91	면제의 것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함유하지 아니한 것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3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제 6001 호 또는 제 6002 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3.1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3.20	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1.92	인조섬유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1.9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2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이며 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제 6001 호의 것을 제외한다)	
6002.40	탄성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퍼센트 이상이며, 고무사는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4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제 60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4.10	탄성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퍼센트 이상이며, 고무사는 함유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5	경편직 직물류(거룬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 6001 호부터 제 6004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6005.2	면제의 것	
6005.2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3.30	합성 섬유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3.40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5.3	합성섬유제의 것	
6005.3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5.3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5.33	서로 다른 색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5.2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5.23	서로 다른 색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5.2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5.3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5.4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6005.4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5.4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5.43	서로 다른 색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5.4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경우에 한한다)
6006	기타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	
6006.1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6.2	면제의 것	
6006.2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6.2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6.23	서로 다른 색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6.2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6.3	합성섬유제의 것	
6006.3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6.3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6.4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6.43	서로 다른 색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6.4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6.33	서로 다른 색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6.3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6.4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6006.4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0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조되었으나 그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물로부터의 변경(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된 경우에 한한다)
61	**제 61 류 의류 및 의류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01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제 61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6101.2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1.30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1.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2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제 61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6102.1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2.2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2.30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2.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앙상블·재킷·블레이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6103.10	슈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2	앙상블	
6103.2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2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2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3	재킷과 블레이저	
6103.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3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3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3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4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	
6103.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4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4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4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앙상블·재킷·블레이저·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6104.1	슈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6104.1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1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2	앙상블	
6104.2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2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2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3	재킷 및 블레이저	
6104.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3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3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3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4	드레스	
6104.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4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4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44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4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5	스커트와 치마바지	
6104.5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5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5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5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6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	
6104.6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6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6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6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5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05.1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5.20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5.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6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셔츠 및 셔츠브라우스(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06.1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6.20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6.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팬츠·브리프·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 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07.1	언더팬츠와 브리프	
6107.1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1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1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2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6107.2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2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2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10.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6110.11	양모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0.12	캐시미어 산양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0.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0.2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0.30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0.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1	유아용의 의류와 의류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11.2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1.30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1.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	트랙슈트·스키슈트 및 수영복(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12.1	트랙슈트	
6112.1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12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1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20	스키슈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3	남자용 또는 소년용의 수영복	
6112.31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3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4	여자용 또는 소녀용의 수영복	
6112.41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4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6107.9	기타	
6107.9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9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슬립·페티코트·브리프·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목욕용 가운·드레싱 가운 및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08.1	슬립과 페티코트	
6108.11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1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2	브리프와 팬티	
6108.2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2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2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3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108.3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3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3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9	기타	
6108.9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9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9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9	티셔츠·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09.1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9.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0	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6113.00	의류(제 5903 호 - 제 5906 호 또는 제 5907 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로 만든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4	기타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14.2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4.30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4.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	팬티호스 · 타이즈 · 스타킹 및 기타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 (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및 바닥을 대지 아니한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15.1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2	기타 팬티호스와 타이즈	
6115.21	합성섬유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22	합성섬유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2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30	기타 여자용의 전길이 또는 무릎길이의 양말류(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9	기타	
6115.94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95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96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9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6	장갑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16.10	플라스틱 또는 고무로 침투 · 도포 또는 피복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6.9	기타	
6116.9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6.9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6.9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6116.9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7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부속품,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것)	
6117.10	숄, 스카프, 머플러, 만틸라,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7.80	기타 부속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7.90	부분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	**제 62 류 의류 및 의류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한다)**	
6201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 · 카코트 · 케이프 · 클록 · 아노락(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 · 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 62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6201.1	오버코트 · 레인코트 · 카코트 · 케이프 · 클록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201.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1.1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1.13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1.1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1.9	기타	
6201.9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1.9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1.93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1.9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2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 · 카코트 · 케이프 · 클록 · 아노락(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 · 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 62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6202.1	오버코트 · 레인코트 · 카코트 · 케이프 · 클록 및 이와 유사한 물품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6203.4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	
6203.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4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4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4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 · 앙상블 · 재킷 · 블레이저 · 드레스 · 스커트 · 치마바지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은 제외한다)	
6204.1	슈트	
6204.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1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1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1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2	앙상블	
6204.2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2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2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2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3	재킷 및 블레이저	
6204.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3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3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3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6202.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2.1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2.13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2.1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2.9	기타	
6202.9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2.9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2.93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2.9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 · 앙상블 · 재킷 · 블레이저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은 제외한다)	
6203.1	슈트	
6203.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12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1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2	앙상블	
6203.2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2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2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3	재킷 및 블레이저	
6203.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3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3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3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6204.4	드레스	
6204.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4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4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44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4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5	스커트 및 치마바지	
6204.5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5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5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5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6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	
6204.6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6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6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6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5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6205.2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5.30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5.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6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셔츠 및 셔츠 브라우스	
6206.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6.2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6.3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6.40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6.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7	남자 또는 소년용의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언더팬츠·브리프·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 가운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207.1	언더팬츠 및 브리프	
6207.1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7.1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7.2	나이트셔츠 및 파자마	
6207.2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7.2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7.2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7.9	기타	
6207.9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7.9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8	여자 또는 소녀용의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슬립·페티코트·브리프·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목욕용 가운·드레싱 가운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208.1	슬립 및 페티코트	
6208.11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8.1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8.2	나이트드레스 및 파자마	
6208.2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8.2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8.2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8.9	기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6208.9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8.9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8.9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9	유아용 의류 및 의류 부속품	
6209.2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9.30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9.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0	의류(제 5602 호·제 5603 호·제 5903 호·제 5906 호 또는 제 5907 호의 직물류의 제품에 한한다)	
6210.10	제 5602 호 또는 제 5603 호의 직물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0.20	기타 의류(소호 제 6201.11 호부터 제 6201.19 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0.30	기타 의류(소호 제 6201.11 호부터 제 6201.19 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0.40	남자 또는 소년용의 기타 의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0.50	여자 또는 소녀용의 기타 의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	트랙슈트·스키슈트 및 수영복, 기타 의류	
6211.1	수영복	
6211.11	남자 또는 소년용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12	여자 또는 소녀용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20	스키슈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3	남자 또는 소년용의 기타 의류	
6211.3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33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3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4	여자 또는 소녀용의 기타 의류	
6211.42	면제의 것	2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6211.43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4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2	브래지어·거들·코르셋·브레이스·서스펜더·가터 및 이와 유사한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제인지 또는 뜨개질 편물제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212.10	브래지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2.20	거들 및 팬티거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2.30	콜세렛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3	손수건	
6213.2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3.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4	쇼올, 스카프, 머플러, 만틸라,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214.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4.20	양모제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4.30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4.40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4.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5	넥타이류	
6215.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5.20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5.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6.00	장갑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7	기타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부분품(제 6212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6217.10	부속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7.90	부분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	**제 63 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된 기타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 및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6301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	
6301.10	전기모포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1.20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 및 여행용 러그(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1.30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 및 여행용 러그(면제의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1.40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 및 여행용 러그(합성섬유제의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1.90	기타 모포 및 여행용 러그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2	베드린넨 · 테이블린넨 · 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	
6302.10	베드린넨(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2.3	기타 베드린넨	
6302.3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2.3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2.3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날염 및 마무리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2.2	기타 베드린넨(날염된 것에 한한다)	
6302.2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2.2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2.2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공정이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2.60	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테리타월지 또는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의 것으로서, 면제의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 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2.9	기타	
6302.9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 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2.93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 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2.40	테이블린넨(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 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2.5	기타 테이블린넨	
6302.5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 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2.53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 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2.5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3.9	기타	
6303.9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3.92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3.9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2.9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3	커튼(드레이프를 포함한다) 및 실내용 블라인드, 커튼 또는 침대용 밸런스	
6303.1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6303.12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3.1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4	기타 실내용품(제 9404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304.1	침대덮개	
6304.11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4.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4.9	기타	
6304.91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4.92	면제의 것(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4.93	합성섬유제의 것(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4.9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아니한 직물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직물로부터 마무리 공정까지 모두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7.20	구명재킷 및 구명벨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7.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직물로부터 마무리 공정까지 모두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8.00	러그, 태피스트리, 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 또는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물 및 사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9.00	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용하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310	넝마(사용하던 것 또는 신품의 것에 한한다), 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의 스크랩 및 끈·코디지·로프 또는 케이블제품의 폐품(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에 한한다)	
6310.10	선별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3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2 부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제 64 류 – 제 67 류)	
64	**제 64 류 신발류·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6401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갑피를 바닥에 스티칭·리베팅·네일링·스크루잉·플러깅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시켰거나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6401.10	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신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1.9	기타 신발	
6401.92	발목을 덮는 것으로서 무릎을 덮지 아니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1.99	기타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날염 및 마무리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6305	포장용의 포대	
6305.10	제 5303 호의 황마 또는 기타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5.2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5.3	인조의 방직용 섬유제의 것	
6305.32	중간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5.33	기타(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5.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5.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6	타포린·천막 및 차양, 텐트, 보트·세일보드 또는 랜드크래프트용 돛, 캠프용품	
6306.1	타포린·천막 및 차양	
6306.12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6.1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6.2	텐트	
6306.22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6.29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6.30	돛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6.40	압축공기식 메트리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6.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7	기타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	
6307.10	마루닦이포·접시닦이포·더스터 및 이와 유사한 청소용포	2 단위 세번변경기준(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6404.2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5	기타 신발류	
6405.10	갑피가 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5.20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6	신발류 부분품[갑피(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 · 힐쿠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 · 레깅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6406.10	갑피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6.20	바깥바닥 및 뒷굽(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5	**제 65 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6501.00	펠트제의 모체(성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펠트제의 플래토우 및 망승(슬릿망승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502.00	모체(각종 재료제의 스트립을 엮은 것 또는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의 것,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 안을 대지 아니한 것 그리고 장식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504.00	모자(각종 재료제의 스트립을 엮은 것 또는 결합하여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505.00	모자[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또는 원단상(스트립상의 것은 제외한다)의 레이스 · 펠트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각종 재료제의 헤어네트(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506	기타 모자(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506.10	안전모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506.9	기타	
6506.91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506.99	기타 재료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6402	기타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6402.1	스포츠용 신발류	
6402.12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2.20	신발류(갑피끈을 플럭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2.9	기타 신발류	
6402.91	발목을 덮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 · 플라스틱 · 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가죽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6403.1	스포츠용 신발류	
6403.12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 부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2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제 끈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40	기타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5	기타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6403.51	발목을 덮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9	기타 신발류	
6403.91	발목을 덮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4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 · 플라스틱 · 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에 한한다)	
6404.1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6404.11	스포츠용 신발류, 정구화 · 농구화 · 운동화 · 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4.19	기타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6704.20	인모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4.90	기타 재료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3 부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제 68 류 – 제 70 류)	
68	**제 68 류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801.00	천연 석재의 포석·연석 및 판석(슬레이트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슬레이트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 6801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천연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석재(슬레이트를 포함한다)의 입·세편 및 분	
6802.10	타일, 큐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최대표면적이 일변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입(粒)·세편 및 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2	기타 비석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와 이들의 제품(단순히 평판상 또는 수평상으로 절단하였거나 톱질한 것에 한한다)	
6802.21	대리석·트래버틴 및 앨러바스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23	화강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29	기타 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9	기타	
6802.91	대리석·트래버틴 및 앨러바스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92	기타 석회질 암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93	화강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99	기타 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3.00	가공한 슬레이트 및 슬레이트 제품 또는 응결슬레이트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4	밀스톤·그라인드스톤·그라인딩휠 및 이와 유사한 것(연마·벼리기·광택·정형 또는 절단용의 것으로 프레임을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수지석과 이들의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6507.00	모자용의 밴드·내장재·커버·해트파운데이션·해트프레임·챙 및 턱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6	**제 66 류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승마용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6601	산류(지팡이 겸용 우산·정원용 산류 및 이와 유사한 산류를 포함한다)	
6601.10	정원용 또는 이와 유사한 산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601.9	기타	
6601.91	대가 절첩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6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602.00	지팡이·시트스틱·채찍·승마용채찍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603	제 6601 호 또는 제 6602 호의 물품의 부분품·트리밍 및 부속품	
6603.20	산류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6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7	**제 67 류 조제우모와 새의 솜털 및 우모 또는 새의 솜털로 만들어진 제품, 조화, 인모제품**	
6701.00	우모 또는 솜털이 붙은 새의 피와 기타 부분, 우모, 우모의 부분, 솜털 및 이들의 제품(제 0505 호의 물품과 가공한 우축 및 우경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2	인조의 꽃·잎 및 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의 꽃·잎 또는 과실로 만든 제품	
6702.10	플라스틱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2.90	기타 재료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3.00	인모(정돈·표백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에 한한다), 가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제조용으로 제조한 양모나 기타의 수모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4	가발·가수염·눈썹 및 속눈썹·스위치 및 이와 유사한 것(인모제나 수모제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에 한한다), 인모제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704.1	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6704.11	전체가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4.19	기타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목재의 대패밥 · 칩 · 파티클 · 톱밥 또는 기타 웨이스트를 시멘트 · 플라스터 또는 기타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에 한한다)	세번변경기준
6809	플라스터제품 또는 플라스터를 기제로 조합한 제품	
6809.1	보드 · 쉬트 · 패널 · 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장식한 것은 제외한다)	
6809.11	지 또는 판지만으로 입혔거나 보강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9.90	기타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0	시멘트 제품 · 콘크리트제품 또는 인조석제품(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810.1	타일 · 판석 · 벽돌 및 이와 유사한 제품	
6810.11	건축용 블록 및 벽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0.9	기타 제품	
6810.91	조립식 건축자재(건축 또는 토목 공사용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1	석면 시멘트제품 · 셀룰로오스파이버 시멘트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6811.40	석면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1.8	석면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	
6811.81	파형의 쉬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1.82	기타 쉬트 · 패널 · 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1.89	기타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2	가공한 석면섬유, 석면을 기제로 한 혼합물 또는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제로 한 혼합물, 이들 혼합물의 제품 또는 석면제품(예: 사 · 직물 · 의류 · 모자 · 신발 · 개스킷)(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 6811 호 또는 제 6813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812.80	청석면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2.9	기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부분품(천연석 · 응결한 천연 또는 인조 연마제 또는 도자제의 것에 한하며, 기타 재료제의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6804.10	밀스톤과 그라인드스톤(밀링용 · 그라인딩용 또는 펄핑용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4.2	기타 밀스톤 · 그라인드스톤 · 그라인딩휠 및 이와 유사한 것	
6804.21	합성 또는 천연다이아몬드제의 것(응결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4.22	기타 연마제의 것(응결된 것에 한한다) 또는 도자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4.23	천연석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4.30	수지석(手砥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5	방직용 섬유재료 · 지 · 판지 또는 기타의 재료를 기제로 한 분상 또는 입상의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특정의 형상으로 절단 또는 봉합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805.10	방직용 섬유의 직물만을 기제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5.20	지 또는 판지만을 기제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5.30	기타재료를 기제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6	슬랙울 · 록울 및 이와 유사한 광물성울, 박리한 버미큐라이트 · 팽창점토 · 다포슬랙 및 이와 유사하게 팽창한 광물성 재료, 단열용 · 방음용 또는 흡음용의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 및 그 제품(제 6811 호 또는 제 6812 호 또는 제 69 류의 것은 제외한다)	
6806.10	슬랙울 · 록울 및 이와 유사한 광물성울(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벌크상 · 쉬트상 또는 롤상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6.20	박리한 버미큐라이트 · 팽창점토 · 다포슬랙 및 이와 유사한 팽창 광물성재료(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7	아스팔트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예: 석유역청 또는 콜타르 피치)의 제품	
6807.10	롤상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8.00	패널 · 보드 · 타일 · 블록 및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 · 짚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규조토 · 트리폴리트 또는 다이어토마이트) 또는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	세번변경기준
6902	내화벽돌 · 내화블록 · 내화타일 및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2.10	마그네슘 · 칼슘 또는 크로뮴원소를 산화마그네슘 · 산화칼슘 또는 산화크로뮴으로 표현하였을때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2.20	알루미나 · 실리카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3	기타 내화성의 도자제품(예: 레토트 · 도가니 · 머플 · 노즐 · 플러그 · 서포트 · 큐펠 · 관 · 쉬드 및 봉)(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3.10	흑연이나 기타 탄소 또는 이들 혼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3.20	알루미나(Al2O3) 또는 알루미나와 실리카(SiO2)의 혼합물 또는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4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 · 바닥깔개용 블록 · 서포트타일 또는 필러타일 및 이와 유사한 것	
6904.10	건축용 벽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5	기와 · 굴뚝통 · 굴뚝갓 · 굴뚝용 내장재 · 건축용 장식품 및 기타 도자제의 건설용품	
6905.10	기와(지붕타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5.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6.00	도자제의 관 · 도관 · 흠통 및 관의 연결구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7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 · 노용 또는 벽용의 타일(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뒷면을 보강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6907.10	타일 · 큐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의 여부를 불문하며, 최대표면적이 일변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6812.91	의류 · 의류부속품 · 신발 및 모자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2.92	지, 표지용의 판지 및 펠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2.93	압축가공한 쉬트상 또는 롤상의 석면섬유 조인팅	6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2.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3	마찰재료와 그 제품(예: 쉬트 · 롤 · 스트립 · 세그먼트 · 디스크 · 와셔 · 패드)(장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브레이크용 · 클러치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 · 기타 광물성 재료 또는 셀룰로오스를 기제로 한 것에 한하며, 직물 또는 기타 재료와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	
6813.20	석면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3.8	석면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	
6813.81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3.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4	운모(가공한 것에 한한다) 및 운모의 제품(응결 또는 재생운모를 포함하며 지 · 판지 또는 기타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814.10	판 · 쉬트 및 스트립(응결 또는 재생한 운모의 것에 한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5	석제품 또는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 · 탄소섬유의 제품 및 이탄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815.10	비전기용 흑연 또는 기타 탄소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5.20	이탄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5.9	기타 제품	
6815.91	마그네사이트 · 백운석 또는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	**제 69 류 도자제품**	
6901.00	벽돌 · 블록 · 타일 및 기타의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분(예:	2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것에 한한다)	
6907.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8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노용 또는 벽용의 타일(유약을 시공한 것에 한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유약을 시공한 것에 한하며, 뒷면을 보강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6908.10	타일·큐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의 여부를 불문하며 최대면적이 일변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인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8.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9	실험실용·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 농업용의 도자제의 통, 튜브 및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 및 이와 유사한 제품	
6909.1	실험실용·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	
6909.11	자기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9.12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9.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9.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0	도자제의 설거지통·세면대·세면대용 받침·목욕통·비데·수세식변기통·수세식변기용 물통·소변기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	
6910.10	자기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0.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6911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	
6911.10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2.00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3	도자제의 소상 및 기타 장식용 제품	
6913.10	자기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4	도자제의 기타 제품	
6914.10	자기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0	**제 70 류 유리와 유리제품**	
7001.00	파유리 및 유리의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 유리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2	유리제의 구(제 7018 호의 마이크로스피어는 제외한다), 봉 또는 관(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002.10	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2.20	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2.3	관	
7002.31	용융석영 또는 기타 용융실리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2.32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섭씨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이하인 기타 유리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3	주입법 및 롤법으로 제조한 유리(쉬트상 또는 프로파일상의 것에 한하고,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003.1	망입하지 아니한 쉬트유리	
7003.12	전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또는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갖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3.19	기타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009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7009.10	백미러(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9.9	기타	
7009.91	틀을 씌우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9.92	틀을 씌운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0	유리제의 카보이 · 병 · 플라스크 · 단지 · 항아리 · 약병 · 앰플 및 기타 용기(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유리제의 보존병, 유리제의 마개 · 뚜껑 및 기타 마개류	
7010.10	앰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0.20	마개 · 뚜껑 및 기타 마개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1	밀폐되지 아니한 유리제의 외피(벌브와 튜브를 포함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전구 · 음극선관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착물이 없는 것에 한한다)	
7011.10	전등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1.20	음극선관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	유리제품(식탁용 · 주방용 · 화장실용 · 사무용 · 실내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제 7010 호 또는 제 7018 호의 것은 제외한다)	
7013.10	유리 도자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2	굽달린 음료용 유리컵류(유리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22	납 크리스탈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28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3	기타 음료용 유리컵류(유리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33	납 크리스탈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37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4	식탁용의 유리제품(음료용 유리컵류는 제외한다) 또는 주방용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7003.20	망입 쉬트유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3.30	프로파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4	인상법 및 취입법으로 제조한 유리(쉬트상의 것에 한하고, 흡수 · 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004.20	유리[전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또는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갖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4.90	기타 유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5	플로트유리 및 표면을 연마한 유리(쉬트상의 것에 한하고, 흡수 · 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005.10	망입하지 아니한 유리(흡수 · 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갖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5.2	기타 망입하지 아니한 유리	
7005.21	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또는 단순히 표면을 연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5.30	망입유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6.00	제 7003 호·제 7004 호 또는 제 7005 호의 유리(구부린 것, 가장자리 가공한 것, 조각한 것, 천공한 것, 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서, 틀을 씌운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부착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접합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	
7007.1	강화 안전유리	
7007.11	차량 · 항공기 · 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7.2	접합 안전유리	
7007.21	차량 · 항공기 · 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8.00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7018	유리제의 비드·모조진주·모조귀석 또는 반귀석 및 이와 유사한 유리세공품과 모조신변장식용품물 제외한 이들의 제품, 인체용의 것을 제외한 유리안구, 소상과 램프가공의 기타 장식용 유리제품(모조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지름이 1 밀리미터 이하인 유리제의 마이크로스피어	
7018.10	유리제의 비드·모조진주·모조귀석 또는 반귀석 및 이와 유사한 유리세공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8.20	지름이 1 밀리미터 이하인 유리제의 마이크로스피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	유리섬유(글라스 울을 포함한다) 및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	
7019.1	슬라이버·로빙·사 및 단연사	
7019.11	단연사(길이가 50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12	로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3	얇은 쉬트(보일)·웨브·매트·매트리스·보드 및 이와 유사한 부직포 제품	
7019.31	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32	얇은 쉬트(보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40	로빙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5	기타 직물	
7019.51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52	폭이 30 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0 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 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20.00	유리제의 기타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유리제품(유리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41	납 크리스탈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42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섭씨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이하인 유리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9	기타 유리제품	
7013.91	납 크리스탈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4.00	신호용 유리제품 및 유리제의 광학용품(제 7015 호의 것은 제외하고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5	시계용 유리 및 이와 유사한 유리, 안경용(시력교정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의 유리(곡면의 것·구부린 것·중공의 것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들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공구면유리와 그 세그먼트	
7015.1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6	압축 또는 주형 유리제의 포장용 블록·슬래브·벽돌·스퀘어·타일 및 기타 제품(망입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건축용 또는 건설용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유리제의 입방체 및 기타 유리세공품(뒷면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모자이크용 또는 이와 유사한 장식용의 것에 한한다), 레드라이트 및 이와 유사한 것, 블록·패널·플레이트·웰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다공 또는 다포유리	
7016.10	유리제의 입방체 및 기타 유리세공품(뒷면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모자이크용 또는 이와 유사한 장식용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7	실험실용·위생용 또는 약제용의 유리제품(눈금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7017.10	용융석영 또는 기타 용융실리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7.20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이하인 기타 유리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7.90	기타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제 14 부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제 71 류)	
71	**제 71 류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7101	천연 또는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실로 꿴 것·장착 또는 세트로된 것은 제외하며,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7101.10	천연진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1.2	양식진주	
7101.21	가공하지 아니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1.22	가공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2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은 제외한다)	
7102.10	선별하지 아니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2.2	산업용의 것	
7102.21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쪼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2.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2.3	공업용이 아닌 것	
7102.31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쪼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2.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3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실로 꿴 것·장착 또는 세트로된 것은 제외한다),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	
7103.10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거칠게 성형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3.9	기타 다른 방법으로 가공한 것	
7103.91	루비·사파이어 및 에메랄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3.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104	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또는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실로 꿴 것, 장착 또는 세트로된 것은 제외한다),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또는 반귀석(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	
7104.10	압전기용 석영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4.20	기타(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거칠게 성형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5	천연 또는 합성의 귀석 또는 반귀석의 더스트와 분	
7105.10	다이아몬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6	은(금 또는 백금으로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반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7106.10	분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6.9	기타	
7106.91	가공하지 아니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6.92	반제품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7.00	은을 입힌 비(卑)금속(반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8	금(백금으로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반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7108.1	화폐용이 아닌 것	
7108.11	분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8.12	기타 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8.13	기타 반제품 형상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8.20	화폐용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9.00	금을 입힌 비(卑)금속 또는 은(반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	백금(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반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7110.1	플라티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7114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7114.1	귀금속제의 것(귀금속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7114.11	은제의 것(기타 귀금속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4.19	기타 귀금속제의 것(귀금속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4.20	귀금속을 입힌 비(卑)금속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5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기타 제품	
7115.10	촉매제(백금제의 와이어 클로스 또는 그릴상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6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의 제품	
7116.10	천연 또는 양식진주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6.20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7	모조신변장식용품	
7117.1	비(卑)금속제의 것(귀금속으로 도금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7117.11	커프링크 및 장식용단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8	주화	
7118.10	주화(금화는 제외하며, 법정통화가 아닌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5 부 비금속 및 비금속 제품들(제 72 류 – 제 83 류)	
72	**제 72 류 철강**	
7201	선철과 스피그라이즌(피그·블록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	
7201.1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5 퍼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110.11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2	팔라듐	
7110.21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3	로듐	
7110.31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4	이리듐·오스뮴 및 루테늄	
7110.41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1.00	백금을 입힌 비(卑)금속, 은 또는 금(반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2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7112.30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2.9	기타	
7112.91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기타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2.92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기타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3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7113.1	귀금속제의 것(귀금속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7113.11	은제의 것(기타의 귀금속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3.19	기타 귀금속제의 것(귀금속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3.20	귀금속을 입힌 비(卑)금속제의 것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201.2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1.50	합금선철, 스피그라이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	페로얼로이	
7202.1	페로망간	
7202.11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2	페로실리콘	
7202.21	실리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30	페로실리코망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4	페로크로뮴	
7202.41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4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50	페로실리코크로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60	페로니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70	페로몰리브데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80	페로텅스텐 및 페로실리코텅스텐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9	기타	
7202.91	페로티타늄 및 페로실리코티타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92	페로바나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93	페로니오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3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과 기타 해면질의 철제품(럼프·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순도가 최저 전중량의 99.94 퍼센트인 철(럼프·펠리트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7203.10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4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7204.10	주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4.2	합금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7204.21	스테인리스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4.30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4.4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	
7204.41	선삭·셰이빙·칩·밀링웨이스트·톱밥·파일링·트리밍 및 스탬핑(번들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4.50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5	입과 분(선철, 스피그라이즌, 철강의 것에 한한다)	
7205.10	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5.2	분	
7205.21	합금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6	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철과 비합금강(제 7203 호의 철은 제외한다)	
7206.10	잉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7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	
7207.1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25 퍼센트 미만인 것	
7207.11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6 호는 제외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207.12	기타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6 호는 제외한다)
72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6 호는 제외한다)
7207.20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25 퍼센트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6 호는 제외한다)
7208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압연한 것에 한하고,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08.10	코일상의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하고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2	기타[코일상의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하고 산세(酸洗)한 것에 한한다]	
7208.25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26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27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3	기타(코일상의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208.36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37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38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39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40	코일상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하고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5	기타(코일상이 아닌 것으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208.51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52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53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54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9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에 한하고,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09.1	코일상의 것으로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 하지 아니한 것	
7209.15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 또는 제 7211 호는 제외한다)
7209.16	두께가 1 밀리미터 초과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 또는 제 7211 호는 제외한다)
7209.17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 또는 제 7211 호는 제외한다)
7209.18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 또는 제 7211 호는 제외한다)
7209.2	코일상이 아닌 것으로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7209.25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 또는 제 7211 호는 제외한다)
7209.26	두께가 1 밀리미터 초과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 또는 제 7211 호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제외한다)
7209.27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 또는 제 7211 호는 제외한다)
7209.28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 또는 제 7211 호는 제외한다)
72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 또는 제 7211 호는 제외한다)
7210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7210.1	주석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7210.11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 제 7209 호 또는 제 7211 호는 제외한다)
7210.12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 제 7209 호 또는 제 7211 호는 제외한다)
7210.20	납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함석판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 제 7209 호 또는 제 7211 호는 제외한다)
7210.30	아연으로 전해도금 또는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 제 7209 호 또는 제 7211 호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제외한다)
7210.4	기타의 방법으로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7210.41	파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 제 7209 호 또는 제 7211 호는 제외한다)
7210.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 제 7209 호 또는 제 7211 호는 제외한다)
7210.50	산화크로뮴 또는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 제 7209 호 또는 제 7211 호는 제외한다)
7210.6	알루미늄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7210.61	알루미늄-아연 합금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 제 7209 호 또는 제 7211 호는 제외한다)
7210.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 제 7209 호 또는 제 7211 호는 제외한다)
7210.70	페인트한 것·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 제 7209 호 또는 제 7211 호는 제외한다)
72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제 7209 호 또는 제 7211 호는 제외한다)
7211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고,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11.1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7211.13	4 면을 압연한 것 또는 크로스드박스패스로 한 것(폭이 15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 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하며, 코일상의 것과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 또는 제 7209 호는 제외한다)
7211.14	기타(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 또는 제 7209 호는 제외한다)
721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 또는 제 7209 호는 제외한다)
7211.2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7211.23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25 퍼센트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 또는 제 7209 호는 제외한다)
721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 또는 제 7209 호는 제외한다)
72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 또는 제 7209 호는 제외한다)
7212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7212.10	주석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부터 제 7211 호까지는 제외한다)
7212.20	아연으로 전해도금 또는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부터 제 7211 호까지는 제외한다)
7212.30	기타의 방법으로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부터 제 7211 호까지는 제외한다)
7212.40	페인트한 것·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부터 제 7211 호까지는 제외한다)
7212.50	기타의 방법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부터 제 7211 호까지는 제외한다)
7212.60	클래드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부터 제 7211 호까지는 제외한다)
7213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7213.1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홈 또는 기타 변형을 포함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3.20	기타(쾌삭강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3.9	기타	
7213.91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4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4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단조·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열간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7214.10	단조한 것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제 7213 호는 제외한다)
7214.2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홈 또는 기타 변형을 포함하는 것이나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13 호는 제외한다)
7214.30	기타(쾌삭강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13 호는 제외한다)
7214.9	기타	
7214.91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13 호는 제외한다)
7214.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13 호는 제외한다)
7215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	
7215.10	쾌삭강의 것(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13 호 또는 제 7214 호는 제외한다)
7215.50	기타(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13 호 또는 제 7214 호는 제외한다)
72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13 호 또는 제 7214 호는 제외한다)
7216	철 또는 비합금강의 형강	
7216.10	유·아이 또는 에이치형강(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2	엘 또는 티형강(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7216.21	엘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22	티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3	유·아이 또는 에이치형강(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7216.31	유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32	아이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33	에이치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40	엘 또는 티형강(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50	기타 형강(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6	형강(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216.61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9	기타	
7216.91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7	철 또는 비합금 강철의 선	
7217.10	도금 또는 도포하지 아니한 것(연마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13 호부터 제 7215 호까지는 제외한다)
7217.20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13 호부터 제 7215 호까지는 제외한다)
7217.30	기타 비(卑)금속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13 호부터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7219.34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35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7220.1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7220.11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0.12	두께가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0.2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0.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1.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2	스테인리스강의 기타의 봉, 스테인리스강의 형강	
7222.1	봉(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222.11	횡단면이 원형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2.20	봉(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2.30	기타 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2.40	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3.00	스테인리스강의 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4	기타 합금강(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 기타 합금강의 반제품	
7224.10	잉곳 및 기타 일차형상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5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제 7215 호까지는 제외한다)
721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13 호부터 제 7215 호까지는 제외한다)
7218	스테인리스강(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7218.10	잉곳 및 기타 일차형상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8.9	기타	
7218.91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7219.1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7219.11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12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13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14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2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코일상의 것은 제외한다)	
7219.21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22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23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24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3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7219.31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32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33	두께가 1 밀리미터 초과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7228	기타 합금강의 기타의 봉, 기타 합금강의 형강,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의 중공드릴봉	
7228.10	고속도강의 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20	실리코망간강의 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30	기타의 봉(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40	기타의 봉(단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50	기타의 봉(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60	기타의 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70	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80	중공드릴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9	기타 합금강의 선	
7229.20	실리코망간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	**제 73 류 철강의 제품**	
7301	철강제의 강시판(천공 또는 조립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철강제의 용접된 형강	
7301.10	강시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1.20	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2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궤조·책궤조와 치형궤조·첨단궤조·교차구류·전철봉과 기타 크로싱피스·침목(크로스타이)·계목판·좌철·좌철쐐기·저판(베이스플레이트)·궤조클립·노반·격재 및 궤조의 접속 또는 고착에 전용되는 기타의 재료에 한한다]	
7302.10	궤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2.30	첨단궤조·교차구류·전철봉과 기타 크로싱피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2.40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한한다)	
7225.1	규소전기강의 것	
7225.11	방향성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5.30	기타(코일상의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5.40	기타(코일상의 것은 제외하며,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5.50	기타[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5.9	기타	
7225.91	아연으로 전해도금 또는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5.92	기타 방법으로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6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7226.1	규소전기강의 것	
7226.11	방향성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6.20	고속도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6.9	기타	
7226.91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6.92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7	기타 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7227.10	고속도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7.20	실리코망간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7.90	기타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73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3.00	주철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	철강제(주철제는 제외한다)의 관과 중공프로파일(무계목의 것에 한한다)	
7304.1	오일 또는 가스 배관용의 파이프라인	
7304.11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2	유정용 또는 가스정용의 케이싱·튜빙과 드릴파이프	
7304.22	스테인리스강제의 드릴파이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23	기타 드릴파이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24	기타(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3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철제 또는 비합금강제의 것에 한한다)	
7304.31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4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7304.41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5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기타 합금강제의 것에 한한다)	
7304.51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	철강제의 기타 관(예: 용접·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7305.1	오일 또는 가스 배관용의 파이프라인	
7305.11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 용접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12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20	유정용 또는 가스정용 케이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3	기타(용접한 것에 한한다)	
7305.31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 또는 용접·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	
7306.1	오일 또는 가스배관용의 파이프라인	
7306.11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2	유정용 또는 가스정용의 케이싱과 튜빙	
7306.21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재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30	기타(용접한 것에 한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철제 또는 비합금강제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40	기타(용접한 것에 한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50	기타(용접한 것에 한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기타 합금강제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6	기타(용접한 것에 한하며,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에 한한다)	
7306.61	횡단면이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69	기타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엘보·슬리브)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307.1	주조한 연결구류	
7307.11	비가단주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7.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7.2	기타(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7307.21	플랜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7.22	나선가공한 엘보·벤드와 슬리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7.23	바트용접한 연결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7.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7.9	기타	
7307.91	플랜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7.92	나선가공한 엘보·벤드와 슬리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7.93	바트용접한 연결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7.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8	철강제의 구조물(제 9406 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봉·형강·관 및 이와 유사한 것	
7308.10	다리와 교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8.20	탑과 격자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8.30	문·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8.40	비계·차단기·지주 또는 갱도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9.00	각종재료용의 철강제 저장조·탱크·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은 제외하고,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기계장치 또는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0	각종재료용의 철강제 탱크·통·드럼·캔·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은 제외하고, 용적이 300 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나, 기계장치 또는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310.10	용적이 50 리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0.2	용적이 50 리터 미만인 것	
7310.21	납땜 또는 크림핑으로 봉합되는 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1.00	철강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2	철강제의 연선·로프·케이블·엷은 밴드·사슬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312.10	연선·로프 및 케이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3.00	철강제의 유자선, 철강제의 대 또는 평선을 꼰 것(유자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과 느슨하게 꼰 2 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	철강선제의 클로드(엔드리스밴드를 포함한다)·그릴·망·울타리, 철강제의 익스팬디드 메탈	
7314.1	직조한 클로드	
7314.12	기계류용 엔드리스밴드(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14	기타 직조한 클로드(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20	그릴·망 및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3 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의 크기가 100 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3	기타 그릴·망 및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에 한한다)	
7314.31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4	기타 클로드·그릴·망 및 울타리	
7314.41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42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50	익스팬디드메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5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	
7315.1	마디가 있는 링크체인과 그 부분품	
7315.11	롤러체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소호 제 7315.19 호로 부터 변경되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315.12	기타체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315.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소호 제 7315.90 호로 부터 변경되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315.90	기타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6.00	철강제의 닻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7.00	철강제의 못·압정·제도용 핀·파형 못·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가 기타 재료제인지 여부를 불문하나 두부가 동인 물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7318.1	나선가공한 제품	
7318.11	코치스크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12	기타 목재 스크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13	스크루훅과 스크루링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14	셀프태핑 스크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15	기타 스크루 및 볼트(너트 또는 와셔가 붙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16	너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2	나선가공하지 아니한 제품	
7318.21	스프링와셔와 기타 록와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22	기타 와셔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제 7315.19 호로 부터 변경되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315.19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5.20	스키드체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소호 제 7315.90 호로 부터 변경되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315.8	기타체인	
7315.81	스터드링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소호 제 7315.90 호로 부터 변경되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315.82	기타(용접한 링크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소호 제 7315.90 호로 부터 변경되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7321.1	조리용 기구와 가열판	
7321.11	가스연료용의 것 또는 가스와 기타 연료 겸용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1.12	액체연료용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1.19	기타(고체연료용의 기구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1.8	기타 기구	
7321.81	가스연료용의 것 또는 가스와 기타 연료 겸용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1.82	액체연료용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1.89	기타(고체연료용의 기구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2	철강제의 방열기(중앙난방용의 것에 한하고, 전기가열식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동력구동식의 팬 또는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냉풍 또는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분기를 포함하고, 전기가열식의 것은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7322.1	방열기와 그 부분품	
7322.11	주철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7318.23	리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24	코터와 코터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9	철강제의 수봉침·수편침·돗바늘·코바늘·자수용 천공수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제의 안전핀과 기타의 핀(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319.40	안전핀과 기타 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0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	
7320.10	판상스프링과 그 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0.20	나선용 스프링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1	철강제의 스토브·레인지·화상·조리기(중앙난방용의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바베큐·화로·가스풍로·가열판 및 이와 유사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4.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5	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	
7325.10	비가단주철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5.9	기타	
7325.91	분쇄기용의 그라인딩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6	철강제의 기타 제품	
7326.1	단조 또는 압착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326.11	분쇄기용의 그라인딩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6.20	철강선제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	**제 74 류 동과 그 제품**	
7401.00	동의 매트, 시멘트동(침전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2.00	정제하지 아니한 동, 전해정제용의 동 양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	정제한 동과 동합금(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403.1	정제한 동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12	와이어바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3	철강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7323.10	철강의 울,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 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3.9	기타	
7323.91	주철제의 것으로 법랑제가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3.92	주철제의 것으로 법랑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3.93	스테인리스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3.94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제의 것으로 법랑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4	철강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324.10	설거지통과 세면대(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4.2	목욕통	
7324.21	주철제의 것(법랑제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제 7407 호는 제외한다)
7408.22	동-니켈 합금의 것(백동) 또는 동-니켈-아연 합금의 것(양백)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407 호는 제외한다)
7408.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407 호는 제외한다)
7409	동의 판·쉬트 및 스트립(두께가 0.1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7409.1	정제한 동의 것	
7409.11	코일상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9.2	동-아연 합금의 것(황동)	
7409.21	코일상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9.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9.3	동-주석 합금의 것(청동)	
7409.31	코일상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9.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9.40	동-니켈 합금의 것(백동) 또는 동-니켈-아연 합금의 것(양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9.90	기타 동 합금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0	동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판지·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7410.1	뒷면을 붙이지 아니한 것	
7410.11	정제한 동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409 호는 제외한다)
7410.12	동합금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409 호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7403.13	빌레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2	동합금	
7403.21	동-아연의 합금(황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22	동-주석의 합금(청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29	기타 동합금(제 7405 호의 마스터얼로이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4.00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5.00	동의 마스터얼로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6	동의 분과 플레이크	
7406.10	비층상조직의 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6.20	층상조직의 분, 플레이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7	동의 봉과 프로파일	
7407.10	정제한 동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7.2	동합금의 것	
7407.21	동-아연 합금의 것(황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8	동의 선	
7408.1	정제한 동의 것	
7408.11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407 호는 제외한다)
740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407 호는 제외한다)
7408.2	동합금의 것	
7408.21	동-아연 합금의 것(황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7415.3	기타 나선가공한 물품	
7415.33	스크루, 볼트와 너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8	동제의 식탁용품 · 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동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 · 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동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418.10	식탁용품 · 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 · 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8.20	위생용품과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9	동제의 기타 제품	
7419.10	체인과 그 부분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9.9	기타	
7419.91	주조 · 주형 · 압착 또는 단조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9.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5	**제 75 류 니켈과 그 제품**	
7501	니켈의 매트 · 소결한 산화니켈 및 니켈제련의 기타 중간생산물	
7501.10	니켈의 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1.20	소결한 산화니켈 및 니켈제련의 기타 중간생산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2	니켈의 괴	
7502.10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2.20	니켈 합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3.00	니켈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4.00	니켈의 분과 플레이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5	니켈의 봉 · 프로파일 및 선	
7505.1	봉과 프로파일	
7505.11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제외한다)
7410.2	뒷면을 붙인 것	
7410.21	정제한 동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409 호는 제외한다)
7410.22	동 합금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409 호는 제외한다)
7411	동제의 관	
7411.10	정제한 동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1.2	동 합금의 것	
7411.21	동-아연 합금의 것(황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1.22	동-니켈 합금의 것(백동) 또는 동-니켈-아연 합금의 것(양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2	동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 · 엘보 · 슬리브)	
7412.10	정제한 동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411 호는 제외한다)
7412.20	동 합금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411 호는 제외한다)
7413.00	동제의 연선 · 케이블 · 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5	못 · 압정 · 제도용 핀 · 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동제 또는 동제의 두부를 가지는 철강제의 것에 한한다), 동제의 스크루 · 볼트 · 너트 · 스크루훅 · 리벳 · 코터 · 코터핀 · 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7415.10	못과 압정 · 제도용 핀 · 스테이플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5.2	나선가공을 하지 아니한 기타 물품	
7415.21	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5.29	기타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505.12	니켈 합금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5.2	선	
7505.21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5.22	니켈 합금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6	니켈의 판 · 쉬트 · 스트립 및 박	
7506.10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6.20	니켈 합금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7	니켈제의 관과 관연결구류(예: 커플링 · 엘보 · 슬리브)	
7507.1	관	
7507.11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7.12	니켈 합금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7.20	관연결구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8	니켈제의 기타 제품	
7508.10	니켈선제의 클로드 · 그릴 및 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	**제 76 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01	알루미늄의 괴	
7601.10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1.20	알루미늄 합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2.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3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7603.10	비층상조직의 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3.20	층상조직의 분, 플레이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4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	
7604.10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4.2	알루미늄 합금의 것	
7604.21	중공프로파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5	알루미늄의 선	
7605.1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	
7605.11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604 호는 제외한다)
76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604 호는 제외한다)
7605.2	알루미늄 합금의 것	
7605.21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604 호는 제외한다)
76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604 호는 제외한다)
7606	알루미늄의 판 · 쉬트 및 스트립(두께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7606.1	직사각형의 것(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7606.11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6.12	알루미늄 합금의 것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7606.9	기타	
7606.91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6.92	알루미늄 합금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7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판지·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는 제외한다)가 0.2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7607.1	뒷면을 붙이지 아니한 것	
7607.11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7.20	뒷면을 붙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8	알루미늄제의 관	
7608.10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8.20	알루미늄 합금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9.00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엘보·슬리브)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608 호는 제외한다)
7610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제 9406 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제의 판·봉·프로파일·관 및 이와 유사한 것	
7610.10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1.00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저장조, 탱크,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2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통·드럼·캔·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 또는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은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고,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612.10	연질의 튜브형 용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3.00	알루미늄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4	알루미늄제의 연선·케이블·엷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614.10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604 호 또는 제 7605 호는 제외한다)
7615	알루미늄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615.10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5.20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6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	
7616.10	못·압정·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스크루·볼트·너트·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6.9	기타	
7616.91	알루미늄선제의 클로드·그릴·망 및 울타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6.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8	**제 78 류 연(鉛)과 그 제품**	
7801	연의 괴	
7801.10	정제한 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801.9	기타	
7801.91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기타 원소의 것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78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802.00	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804	연의 판·쉬트·스트립 및 박, 분과 플레이크	
7804.1	판·쉬트·스트립 및 박	
7804.11	쉬트·스트립 및 박[두께(보강재는 제외한다)가 0.2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8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804.20	분과 플레이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806.00	연제의 기타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9	**제 79 류 아연과 그 제품**	
7901	아연의 괴	
7901.1	합금하지 아니한 아연	
7901.11	아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 퍼센트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1.12	아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 퍼센트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1.20	아연 합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2.00	아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3	아연의 더스트·분과 플레이크	
7903.10	아연더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4.00	아연의 봉·프로파일 및 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5.00	아연의 판·쉬트·스트립 및 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7.00	아연제의 기타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0	**제 80 류 주석과 그 제품**	
8001	주석의 괴	
8001.10	합금하지 아니한 주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001.20	주석 합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002.00	주석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003.00	주석의 봉·프로파일 및 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007.00	주석제의 기타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	**제 81 류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8101	텅스텐(울프람)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1.10	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1.9	기타	
8101.94	텅스텐의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1.96	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1.97	웨이스트와 스크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1.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2	몰리브데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102.10	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2.9	기타	
8102.94	몰리브데늄의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2.95	봉(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것은 제외한다), 프로파일 · 판 · 쉬트 · 스트립 및 박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2.96	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2.97	웨이스트와 스크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2.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3	탄탈륨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3.20	탄탈륨의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3.30	웨이스트와 스크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3.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4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4.1	마그네슘의 괴	
8104.11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8 퍼센트 이상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4.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4.20	웨이스트와 스크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4.30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줄밥 · 연삭설 및 입, 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4.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5	코발트의 매트 및 코발트 제련의 기타 중간생산물, 코발트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5.20	코발트의 매트와 코발트 제련의 기타 중간생산물, 코발트의 괴, 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5.30	웨이스트와 스크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5.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6.00	비스머드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7	카드뮴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7.20	카드뮴의 괴, 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7.30	웨이스트와 스크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7.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8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8.20	티타늄의 괴, 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8.30	웨이스트와 스크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8.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9	지르코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9.20	지르코늄의 괴, 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9.30	웨이스트와 스크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9.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0	안티모니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10.10	안티모니의 괴, 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0.20	웨이스트와 스크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0.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1.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의 공구	
8201.10	가래 및 삽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1.30	곡괭이·픽스·괭이와 쇠스랑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1.40	도끼·빌훅 및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1.50	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가금용 가위를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1.60	울타리전단기·양손용 전지가위 및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1.90	기타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의 수도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2	수동식 톱, 각종의 톱날(슬리팅·슬로팅 또는 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	
8202.10	수동식 톱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2.20	띠톱의 날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2.3	원형톱날(슬리팅 또는 슬로팅 톱날을 포함한다)	
8202.31	작용하는 부분이 강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2.39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112	베릴륨·크로뮴·게르마늄·바나듐·갈륨·하프늄·인듐·니오븀(컬럼븀)·레늄 및 탈륨과 이들 금속의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12.1	베릴륨	
8112.12	괴, 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13	웨이스트와 스크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2	크로뮴	
8112.21	괴, 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22	웨이스트와 스크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5	탈륨	
8112.51	괴, 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52	웨이스트와 스크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9	기타	
8112.92	괴, 웨이스트와 스크랩, 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3.00	서메트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	**제 82 류 비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이들의 부분품**	
8201	수도구에 해당하는 것중 가래·삽·곡괭이·픽스·괭이·포크와 쇠스랑, 도끼·빌훅 및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의 전지가위, 낫·초절기·울타리 전단기·제재용 쐐기 및 기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2.40	체인톱의 날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2.9	기타의 톱날	
8202.91	금속가공용 직선형 톱날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2.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3	줄 · 플라이어(절단용 플라이어를 포함한다) · 집게 · 핀셋 · 금속절단용 가위 · 파이프커터 · 볼트크로퍼 · 천공편치 및 이와 유사한 수공구	
8203.10	줄과 이와 유사한 공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3.20	플라이어(절단용 플라이어를 포함한다) · 집게 · 핀셋과 이와 유사한 공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3.30	금속 절단용의 가위 및 이와 유사한 공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3.40	파이프 커터 · 볼트 크로퍼 · 천공편치 및 이와 유사한 공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204	수동식 스패너와 렌치(토크미터렌치를 포함하나 탭렌치는 제외한다), 호환성 스패너소켓(손잡이가 달린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204.1	수동식의 스패너와 렌치	
8204.11	조정할 수 없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4.12	조정할 수 있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4.20	호환성 스패너소켓(손잡이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	수공구(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 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블로램프, 공작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외의 바이스 · 클램프 및 이와 유사한 것, 모루, 가반식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 또는 족답식의 그라인딩휠	
8205.10	드릴링 · 드레딩 또는 태핑용 공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20	해머와 슬레즈해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30	목재가공용의 대패 · 끌 · 둥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40	스크루드라이버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5	기타 수공구(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한다)	
8205.51	가정용 공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5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60	블로램프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70	바이스 · 클램프 및 이와 유사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90	기타(이 호의 둘 이상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트를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6.00	제 8202 호부터 제 8205 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7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 · 스탬핑 · 펀칭 · 태핑 · 드레딩 · 드릴링 · 보링 · 브로칭 · 밀링 · 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8207.1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	
8207.13	작용하는 부분이 서메트제인 것	2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60	보링 또는 브로칭용의 공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70	밀링용의 공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80	터닝용의 공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90	기타 호환성 공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8	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칼과 절단용 칼날	
8208.10	금속 가공용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8.20	목재 가공용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19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20	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30	프레싱 · 스탬핑 또는 펀칭용의 공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40	태핑 또는 드레딩용의 공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50	드릴링용의 공구(착암기용의 것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208.30	주방용 기구 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8.40	농업·원예 또는 임업 기계용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8.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9.00	공구용의 판·봉·팁 및 이와 유사한 것(서메트제의 것으로서 장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0.00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 또는 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개의 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1	칼(톱니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에 한하며, 전정용 칼을 포함하고, 제 8208 호의 칼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날	
8211.1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1.9	기타	
8211.91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1.92	칼날이 고정된 기타의 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1.93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1.94	칼날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1.95	비(卑)금속제의 손잡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2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로서 스트립상의 것을 포함한다)	
8212.10	면도기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2.20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로서 스트립상의 것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2.90	기타 부분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3.00	가위·재단용의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및 이들의 날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4	기타 칼붙이 제품(예: 조발기·정육점 또는 주방용 칼붙이·초퍼 및 민싱용 칼·종이용 칼),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세트 및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8214.10	종이용 칼·편지개봉기·지우개용 칼·연필깎이와 그 날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4.20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21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5	스푼 · 포크 · 국자 · 스키머 · 케이크서버 · 생선용 칼 · 버터용 칼 · 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주방 또는 식탁용품	
8215.1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하나의 물품은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5.20	위 물품이 조합된 기타의 세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5.9	기타	
8215.91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5.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3	**제 83 류 비금속제의 각종 제품**	
8301	비(卑)금속제의 자물쇠(열쇠 · 다이얼 또는 전기작동식), 비(卑)금속제의 유금과 유금이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卑)금속제의 열쇠	
8301.10	자물쇠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1.20	자동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자물쇠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1.30	가구에 사용되는 종류의 자물쇠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1.40	기타의 자물쇠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1.50	유금과 유금이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1.60	부분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1.70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2	비(卑)금속제의 장착구 ·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 · 문 · 계단 · 창 · 차일구 · 마차 · 마구 · 트렁크 · 장 · 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 · 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 비(卑)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	
8302.10	경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20	카스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30	자동차용에 적합한 기타 장착구 ·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6	비(卑)금속제의 벨·징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식의 것은 제외한다), 비(卑)금속제의 소상과 기타 장식품, 비(卑)금속제의 사진틀·그림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비(卑)금속제의 거울	
8306.10	벨·징 및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6.2	소상과 기타 장식품	
8306.21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6.30	사진틀·그림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거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7	비(卑)금속제의 플렉시블 튜빙(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307.10	철강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7.90	기타 비(卑)금속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8	비(卑)금속제의 유금·유금이 붙은 프레임·버클·버클유금·훅·아이·아이릿 및 이와 유사한 것(의류·신발류·차양·핸드백·여행구 또는 기타 제품으로 된 물품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관리벳 또는 이고(二股)리벳, 비(卑)금속제의 구슬과 스팽글	
8308.10	훅·아이 및 아이릿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8.20	관리벳 또는 이고리벳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8.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9	비(卑)금속제의 전(栓)·캡과 뚜껑(크라운코르크·스크루캡 및 점적구용 전을 포함한다)·병용의 캡슐·나선형의 마개·마개용 커버·실 및 기타 포장용 부속품	
8309.10	크라운코르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10.00	비(卑)금속제의 사인판, 명판, 주소판 및 이와 유사한 판, 숫자,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8302.4	기타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8302.41	건물용으로 적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42	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50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60	자동도어 폐지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3.00	비(卑)금속제의 장갑한 또는 보강한 금고·스트롱박스와 스트롱룸용의 문과 저장실·현금 또는 문서용 상자 및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4.00	비(卑)금속제의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페이퍼트레이·페이퍼레스트·펜트레이·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 및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 또는 책상용 비품(제 9403 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5	비(卑)금속제의 루스-리프식 바인더 또는 서류철용 피팅·서신용 클립·레터코너·서류용 클립·색인용 태그 및 이와 유사한 사무용품, 비(卑)금속제의 스트립상의 스테이플(예: 사무실용·가구류용·포장용의 것에 한한다)	
8305.10	루스-리프식 바인더 또는 서류철용 피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5.20	스트립상의 스테이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5.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문자 및 기타 표지판(제 94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세번변경기준
8311	비(卑)금속제 또는 금속탄화물제의 선·봉·관·판·용접봉 및 이와 유사한 물품[금속 또는 금속탄화물의 납땜·납접·용접 또는 용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를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분을 응결하여 제조한 금속스프레이용의 선 및 봉	
8311.10	비(卑)금속제의 용접봉(봉에 도포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11.20	비(卑)금속제의 선(심에 충전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11.30	비(卑)금속제의 도포된 봉과 심이 충전된 선(불로 납땜·납접 또는 용접하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6 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 84 류 및 제 85 류)	
84	**제 84 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 이들의 부분품**	
8401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아니한 원자로용 연료체(카트리지),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계류와 기기	
8401.10	원자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1.20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계류와 기기 및 그 부분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1.30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연료체(카트리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1.40	원자로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2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의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 과열수보일러	
8402.1	증기발생보일러	
8402.11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을 초과하는 수관보일러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402.12 호는 제외한다)
8402.12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 이하인 수관보일러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402.11 호는 제외한다)
8402.19	기타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2.20	과열수보일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3	중앙난방용의 보일러(제 8402 호의 것은 제외한다)	
8403.10	보일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4	제 8402 호 또는 제 8403 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 스팀 또는 기타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8404.10	제 8402 호 또는 제 8403 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4.20	스팀 또는 기타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5	발생로가스 또는 수성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 및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405.10	발생로가스 또는 수성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 및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3	제 87 류의 차량추진용 왕복 피스톤식 엔진	
8407.31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32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초과 25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33	실린더용량이 250 시시 초과 1,00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34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0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6	증기터빈	
8406.10	선박추진용 터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6.8	기타 터빈	
8406.81	출력이 40 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406.82 호는 제외한다)
8406.82	출력이 40 메가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406.81 호는 제외한다)
840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8407.10	항공기용 엔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2	선박추진용 엔진	
8407.21	아웃보드 모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9.9	기타	
8409.91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0	수력터빈 · 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8410.1	수력터빈과 수차	
8410.11	동력이 1,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410.12 호 또는 제 8410.13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0.12	동력이 1,000 킬로와트 초과 10,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410.11 호 또는 제 8410.13 호는 제외한다)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90	기타 엔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8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엔진 또는 세미디젤엔진)	
8408.10	선박추진용 엔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8.20	제 87 류의 차량추진용 엔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8.90	기타 엔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9	부분품(제 8407 호 또는 제 8408 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8409.10	항공기 엔진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1.2	터보프로펠러	
8411.21	출력이 1,1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411.22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1.22	출력이 1,1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411.21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1.8	기타의 가스터빈	
8411.81	출력이 5,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411.82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1.82	출력이 5,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411.81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0.13	동력이 10,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410.11 호 또는 제 8410.12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0.90	부분품(조정기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1	터보제트 · 터보프로펠러와 기타 가스터빈	
8411.1	터보제트	
8411.11	추진력이 25 킬로뉴턴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411.12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1.12	추진력이 25 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411.11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3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	
8412.31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8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액체엘리베이터	
8413.1	펌프(계기를 갖춘 것 또는 갖추도록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8413.11	연료 또는 윤활유 급유용의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1.9	부분품	
8411.91	터보제트 또는 터보프로펠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	기타의 엔진과 모터	
8412.10	반동 엔진(터보제트는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2	수력엔진과 수력모터	
8412.21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60	기타 용적형 회전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70	기타 원심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8	기타 펌프, 액체엘리베이터	
8413.81	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82	액체엘리베이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9	부분품	
8413.91	펌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20	수지식 펌프(소호 제 8413.11 호 또는 제 8413.19 호의 것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30	연료 · 윤활유 급유용 또는 냉각 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40	콘크리트 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50	기타 용적형 왕복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5	팬	
8414.51	테이블 · 바닥 · 벽 · 창문 · 천장 또는 지붕용의 팬(출력이 125 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60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 센티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8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92	액체 엘리베이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	기체 또는 진공펌프 · 기체 또는 기타 가스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8414.10	진공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20	손 또는 발작동식의 기체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30	냉장 · 냉동 설비용의 압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40	예인용의 바퀴달린 섀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6	액체연료용·분쇄한 고체연료용 또는 기체연료용의 노용 버너, 기계식 스토커(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배출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8416.10	액체연료용의 노용 버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6.20	기타 노용 버너(콤비네이션 버너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6.30	기계식 스토커(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배출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6.90	부분품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5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8415.10	창형 또는 벽형의 것(자장식의 것 또는 분리형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5.20	자동차용의 것(탑승자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5.8	기타	
8415.81	냉각 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5.82	기타(냉각 유닛을 결합한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5.83	냉각 유닛을 결합하지 아니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7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실험실용 노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	
8417.10	배소·용해 또는 기타 열처리용의 노와 오븐(광석·황철광 또는 금속 처리용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7.20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의 오븐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7.8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7.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	냉장고·냉동고 및 기타 냉장 또는 냉동기구(전기식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열펌프(제 8415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8418.10	냉장-냉동고(분리된 외부도어를 갖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2	가정형의 냉장고	
8418.21	압축식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30	체스트형의 냉동고(용량이 800 리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40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 리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50	냉장 또는 냉동용 장치를 갖춘 저장과 전시목적의 기타	6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증발·응축 또는 냉각과 같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의 여부를 불문하며(제 8514 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는 제외한다),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	
8419.1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비전기식의 것에 한한다)	
8419.11	가스식의 즉시식 물가열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20	내과용·외과용 또는 실험실용의 살균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3	건조기	
8419.31	농산물용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32	목재·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용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가구(체스트, 캐비닛, 전시용카운터, 쇼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한다)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6	기타 냉장 또는 냉동기구, 열펌프	
8418.61	열펌프(제 8415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6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9	부분품	
8418.91	냉장 또는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0	캘린더기 또는 기타 로울기(금속 또는 유리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이들에 사용되는 실린더	
8420.10	캘린더기 또는 기타 로울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0.9	부분품	
8420.91	실린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40	증류기 또는 정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50	열교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60	기체 액화용의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8	기타 기기	
8419.81	뜨거운 음료제조용 또는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23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3	기체용의 여과기 또는 청정기	
8421.31	내연기관용의 공기여과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9	부분품	
8421.9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	
8421.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8421.11	크림분리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12	의류탈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2	액체용의 여과기 또는 청정기	
8421.21	물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22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6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30	병·깡통·상자·자루 또는 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류, 병·단지·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류,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40	기타 포장기계류(열수축 포장기계류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	중량측정기기(감량이 50 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의 계수기 또는 검사기를 포함한다), 각종의 저울추	
8423.10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 가정형의 저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20	컨베이어용의 연속계량식 저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류, 병·깡통·상자·자루 또는 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류, 병·단지·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류, 기타 포장기계류(열수축 포장기계류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8422.1	접시세척기	
8422.11	가정형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20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 · 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8424.1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20	스프레이 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30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8	기타 기기	
8424.81	농업용 또는 원예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30	정량저울과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저울(호퍼스케일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8	기타 중량측정기기	
8423.81	최대 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82	최대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 초과 5,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90	각종의 저울 추, 저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	풀리 태클과 호이스트(스킵호이스트는 제외한다), 윈치와 캡스턴, 잭	
8425.1	풀리 태클과 호이스트(스킵호이스트 또는 차량을 들어올리는데 사용하는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8425.11	전동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3	윈치, 캡스턴	
8425.31	전동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4	잭, 차량을 들어올리는데 사용하는 호이스트	
8425.41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42	기타의 잭과 호이스트(액압식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 · 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8426.1	천장주행 크레인 · 트랜스포터 크레인 · 갠트리 크레인 · 교각형 크레인 · 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	
8426.11	고정식의 천장주행 크레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9	기타 기계류	
8426.91	도로주행차량에 장착하도록 설계제작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7	포크리프트트럭, 기타 작업트럭(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된 것에 한한다)	
8427.10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 트럭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7.20	기타 자주식 트럭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12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20	타워크레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30	문형 또는 정지형 지브 크레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4	기타 기계류(자주식의 것에 한한다)	
8426.41	타이어가 달린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33	기타 벨트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40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60	텔레페릭·의자 앙하기·스키용 드래그라인, 퓨니쿨러용의 견인장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90	기타 기계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7.90	기타 트럭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	기타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	
8428.10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20	뉴매틱식의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3	물품 또는 재료용의 기타 연속 자동식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8428.31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제작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32	기타 버켓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5	메커니컬 셔블, 굴착기와 셔블로더	
8429.51	프론트엔드 셔블로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52	360 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	기타 이동·정지·지균·스크레이핑·굴착·탬핑·콤팩팅·채굴 또는 천공용의 기계(토양·광석 또는 광물용의 것에 한한다), 항타기와 항발기,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로어	
8430.10	항타기와 항발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20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로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	자주식의 불도저·앵글도저·그레이더·레벨러·스크레이퍼·메커니컬 셔블·굴착기·셔블로더·탬핑머신 및 로드롤러	
8429.1	불도저와 앵글도저	
8429.11	무한 궤도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20	그레이더와 레벨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30	스크레이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40	탬핑머신 및 로드롤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6	기타 기계류(자주식이 아닌 것에 한한다)	
8430.61	탬핑용 또는 콤팩팅용의 기계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	제 8425 호부터 제 8430 호까지의 기계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31.10	제 8425 호의 기계류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20	제 8427 호의 기계류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3	제 8428 호의 기계류의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3	석탄 또는 암석 절단기와 터널 뚫는 기계류	
8430.31	자주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4	기타 천공용 또는 시굴용 기계류	
8430.41	자주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50	기타 기계류(자주식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류(토양정리 또는 경작용의 것에 한한다), 잔디 또는 운동장용의 롤러	
8432.10	플라우(쟁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2	하로우(쇄토기)·스카리파이어·컬티베이터(중경기)·제초기와 호우	
8432.21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30	파종기·식부기와 이식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31.31	리프트, 스킵호이스트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4	제 8426 호·제 8429 호 또는 제 8430 호의 기계류의 것	
8431.41	버켓·셔블·그랩과 그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42	불도저 또는 앵글도저의 블레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43	소호 제 8430.41 호 또는 제 8430.49 호의 천공 또는 시굴용 기계류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49	기타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20	기타 풀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의 커터바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30	기타 건조제조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40	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픽업결속기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5	기타 수확기, 탈곡기	
8433.51	수확-탈곡 겸용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52	기타 탈곡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상일 것
8432.40	퇴비살포기와 비료살포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80	기타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90	부분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	수확기 또는 탈곡기(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베는 기계, 조란·과실 또는 기타 농산물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제 8437 호의 기계류는 제외한다)	
8433.1	공원 또는 운동장의 잔디깎는 기계	
8433.11	동력식의 것(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상일 것
8434.20	낙농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5	포도주·사과술·과즙 또는 이와 유사한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스·크러셔 및 이와 유사한 기계류	
8435.10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6	기타 농업·원예·임업·가금의 사육용 또는 양봉용 기계류(기계장치 또는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	
8436.10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53	구경 또는 괴경의 수확기(근채 수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60	조란·과실 또는 기타 농산물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4	착유기와 낙농기계류	
8434.10	착유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7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 제분업용 기계류 또는 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의 가공 기계류(농장형의 것은 제외한다)	
8437.10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7.80	기타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7.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 또는 제조 산업용 기계류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의 추출 또는 조제용의 기계류는 제외한다)	
8438.10	베이커리기계류와 마카로니·스파게티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제조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6.2	가금의 사육용 기계,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	
8436.21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6.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6.80	기타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6.9	부분품	
8436.91	가금 사육용 기계류 또는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9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류 또는 지 또는 판지의 제조용 또는 완성가공용 기계류	
8439.10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9.20	지 또는 판지의 제조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9.30	지 또는 판지의 완성가공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9.9	부분품	
8439.91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류의 것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38.20	과자·코코아 또는 초콜릿 제조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30	설탕 제조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40	양조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50	육류 또는 가금육의 조제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60	과실·견과 또는 채소의 조제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80	기타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41.20	종이백·봉지 또는 봉투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30	카톤·박스·케이스·튜브·드럼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40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 제품의 몰딩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80	기타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2	플레이트·실린더 또는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의 조제용 또는 제조용 기계류·장치 및 장비(제 8456 호부터 제 8465 호까지의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0	제본용 기계류(제본용 재봉기를 포함한다)	
8440.10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0.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	기타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의 가공기계류(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8441.10	절단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공작기계는 제외한다),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그레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8442.30	기계류·장치 및 장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2.40	상기한 기계류·장치 또는 장비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2.50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그레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	제 8442 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 인쇄기·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3.1	제 8442 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8443.11	오프셋 인쇄기계류(릴식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2	오프셋 인쇄기계류(쉬이트식 사무실용의 것으로 한 변이 22 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 센티미터 이하인 제본되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아니한 상태의 쉬트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3	기타 오프셋 인쇄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4	활판인쇄용 기계류(릴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의 것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5	활판인쇄용 기계류(릴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의 것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6	곡면인쇄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7	그라비아인쇄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3	기타 인쇄기, 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8443.31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인쇄, 복사 또는 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32	기타(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9	부분품 및 부속품	
8443.91	제 8442 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4.00	인조섬유제의 방사·연신·텍스처 또는 절단용의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	방적준비기계, 방적기·합사기 또는 연사기와 기타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위권기를 포함한다)와 제 8446 호 또는 제 8447 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 준비용 기계	
8445.1	방적준비기계	
8445.11	카드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12	코밍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13	연조기 또는 조방기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6	직기(직조기)	
8446.10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직물 직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6.2	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물 직조용(셔틀형의 것에 한한다)	
8446.21	직조기(동력구동식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6.30	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물 직조용(셔틀리스형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7	편직기·스티치 본딩기와 짐프사·튜울·레이스·자수포·트리밍·브레이드 또는 망의 제조용 기계 및 터프팅 기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20	방적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30	합사기 또는 연사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40	권사기(위권기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47.1	원형편기	
8447.11	실린더 지름이 165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7.12	실린더 지름이 16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7.20	횡편기, 스티치 본딩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	제 8444 호·제 8445 호·제 8446 호 또는 제 8447 호의 기계의 보조기계류(예: 도비기·자카드기·자동정지기·셔틀교환기), 이 호 또는 제 8444 호·제 8445 호·제 8446 호 또는 제 8447 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예: 스핀들·스핀들플라이어·침포·코움·방사니플·셔틀·종광·종광프레임·메리야스용 바늘)	
8448.1	제 8444 호·제 8445 호·제 8446 호 또는 제 8447 호의 기계의 보조기계류	
8448.11	도비기와 자카드기, 이들과 사용하기 위한 카드의	6 단위
	측소·복사·천공 또는 조립용 기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20	제 8444 호에 규정한 기계 또는 이들의 보조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3	제 8445 호에 규정한 기계 또는 이들의 보조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31	침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32	침포를 제외한 방적준비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33	스핀들·스핀들플라이어·스피닝링 및 링트래블러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4	직기(직조기) 또는 이들의 보조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42	직조기용의 바디 · 종광과 종광 프레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5	제 8447 호의 기계 또는 이들의 보조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51	스티치 형성에 사용하는 싱커 · 바늘과 기타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59	기타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9.00	펠트 또는 부직포(원단상 또는 성형의 것)의 제조 또는 완성가공용 기계류(펠트모자 제조용 기계류를 포함한다), 모자제조용 형(型)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0	가정형 또는 세탁소형의 세탁기(세탁 · 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	
8450.1	1 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	
8450.11	완전자동식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0.12	기타 기계(원심 탈수기를 내장한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0.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50.20	기계(1 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0.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	세탁용·클리닝용·쥐어짜기용·건조용·다림질용·프레스용(퓨징프레스를 포함한다)·표백용·염색용·드레싱용·완성가공용·도포용 또는 침지용의 기계류(제 8450 호의 것은 제외하며, 방직사·직물류 또는 방직용 섬유제품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 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 또는 기타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권취기·재권취기·접음기·절단기 또는 핑킹기(방직용 직물용의 것에 한한다)	
8451.10	드라이클리닝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2	건조기	
8451.21	1 회의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29	기타	6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30	다림질기와 프레스(퓨징프레스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40	세적기·표백기 또는 염색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50	권취기·재권취기·접음기·절단기 또는 핑킹기(방직용 직물용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80	기타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2	재봉기(제 8440 호의 제본용 재봉기는 제외한다), 재봉기용으로 특수 설계제작된 가구 · 밑판 · 덮개, 재봉기용 바늘	
8452.10	가정형의 재봉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452.21 호 또는 제 8452.29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2.2	기타 재봉기	
8452.21	자동식의 유닛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452.10 호 또는 제 8452.29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452.10 호 또는 제 8452.21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2.30	재봉기용 바늘	6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2.90	재봉기용의 가구 · 밑판과 덮개 및 그 부분품, 재봉기의 기타 부분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3	원피나 가죽의 유피준비기 · 유피기 또는 가공기계류 또는 원피나 가죽으로 만든 신발 또는 기타 물품의 제조나 수선용 기계류(재봉기는 제외한다)	
8453.10	원피나 가죽의 유피준비기 · 유피기 또는 가공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3.20	신발의 제조 또는 수선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3.80	기타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55	금속 압연기와 그 롤	
8455.10	관 압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5.2	기타 압연기	
8455.21	열간 또는 열·냉간 겸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5.22	냉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5.30	압연기용의 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5.90	기타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5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4	전로·레이들·잉곳용의 주형과 주조기(야금용 또는 금속주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8454.10	전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4.20	잉곳용의 주형과 레이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4.30	주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56	각종 재료의 가공공작기계(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 또는 광자빔 · 초음파 · 방전 · 전기화학 · 전자빔 · 이온빔 또는 플라즈마아크 방식으로 재료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에 한한다), 워터제트 절단기	
8456.10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 또는 광자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6.20	초음파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6.30	방전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7	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 ·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의 것에 한한다) 및 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 머신	
8457.10	머시닝센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7.20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7.30	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 머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8	금속 절삭가공용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	
8458.1	수평 선반	
8458.11	수치제어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8.9	기타 선반	
8458.91	수치제어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59.31	수치제어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40	기타 보링머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5	무릎형 밀링머신	
8459.51	수치제어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6	기타 밀링머신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	금속 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웨이타입 유닛 헤드 머신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보링·밀링·나선가공 또는 태핑용으로 사용되는 것[제 8458 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8459.10	웨이타입 유닛 헤드머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2	기타 드릴링 머신	
8459.21	수치제어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3	기타 보링밀링머신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2	기타 연삭기(축 고정정밀도가 0.01 밀리미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8460.21	수치제어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3	샤프닝머신(공구 또는 커터를 연삭하는 것에 한한다)	
8460.31	수치제어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40	호닝머신 또는 래핑머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59.61	수치제어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70	기타 드레딩 또는 태핑머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	디버링·샤프닝·그라인딩·호닝·래핑·폴리싱 또는 기타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연마재·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메트를 가공하는 것(제 8461 호의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 또는 기어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	
8460.1	평면 연삭기(축 고정정밀도가 0.01 밀리미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8460.11	수치제어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	단조·해머링 또는 다이스탬핑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접음·교정·펼침·전단·펀칭 또는 낫칭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그 외의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 가공용의 프레스	
8462.10	단조기 또는 다이스탬핑기(프레스를 포함한다)와 해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2	굽힘기·접음기·교정기 또는 펼침기(프레스를 포함한다)	
8462.21	수치제어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1	플레이닝용·쉐이핑용·슬로팅용·부로칭용·기어절삭용·기어연삭용 또는 기어완성가공용·톱질용·절단용의 공작기계 및 금속이나 서메트를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기타 공작기계(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461.20	쉐이핑머신 또는 슬로팅머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1.30	부로칭머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1.40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 또는 기어완성가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1.50	톱기계 또는 절단기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3	기타 금속이나 서메트의 가공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것에 한한다)	
8463.10	드로우 벤치(봉·관·프로파일·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하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3.20	나사전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3.30	선가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3	전단기(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8462.31	수치제어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4	펀칭기 또는 낫칭기(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462.41	수치제어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9	기타	
8462.91	유압식 프레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65.9	기타	
8465.91	톱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2	평삭기 · 밀링기 또는 몰딩기(절단 방식으로 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3	연삭기 · 샌딩기 또는 광택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4	굽힘기 또는 조립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5	드릴링 또는 모티싱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6	스플리팅 · 슬라이싱기 또는 박피기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4	석 · 도자기 · 콘크리트 · 석면 시멘트 또는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기계 또는 유리의 냉간가공기계	
8464.10	톱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4.20	연마기 또는 광택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	목재 · 코르크 · 뼈 · 경질고무 · 경질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기계(네일용 · 스테이플용 · 접착용 또는 기타 조립용의 기계를 포함한다)	
8465.10	다 작업기계(공구의 교환없이 다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상일 것
8466.9	기타	
8466.91	제 8464 호의 기계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92	제 8465 호의 기계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93	제 8456 호부터 제 8461 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94	제 8462 호 또는 제 8463 호에 해당하는 기계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또는 전동기를 자장한 것 또는 비전기식의 모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8467.1	압축공기식의 것	
8467.11	회전방식의 것(회전 진동자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	제 8456 호부터 제 8465 호까지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가공물홀더 또는 툴홀더·자동개폐식 다이헤드·분할대와 기타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을 포함한다), 각종의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툴홀더	
8466.10	툴홀더와 자동 개폐식 다이헤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20	가공용 홀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30	분할대와 기타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9	부분품	
8467.91	체인톱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92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8	납땜용 또는 용접용의 기기(절단가능 여부를 불문하며, 제 8515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표면열처리용의 기기(가스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에 한한다)	
8468.10	수지식 취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2	전동기를 자장한 것	
8467.21	각종의 드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22	톱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8	기타 공구	
8467.81	체인톱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0.2	기타 전자계산기	
8470.21	인쇄 장치를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0.30	기타 계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0.50	금전 등록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8.20	가스를 사용하는 기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8.80	기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8.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9.00	타자기(제 8443 호의 프린터기는 제외한다), 워드프로세싱머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0	계산기와 계산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데이터 녹음·재생 및 표시기, 회계기·우편요금계기·표권발행기 및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기구를 갖춘 것에 한한다), 금전등록기	
8470.10	전자계산기(외부의 전원없이 작동되는 것에 한한다)와 계산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데이터 녹음, 재생 및 표시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내장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70	기억장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80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2	기타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 또는 스텐실 등사기 · 주소인쇄기 · 현금자동지불기 · 주화분류기 · 주화계수 또는 포장기 · 연필절삭기 · 천공기 또는 스테이플기)	
8472.10	등사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 ·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4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1	적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장치 및 입출력 장치를 내장한 것(이들의 상호결합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49	기타(시스템의 형태로 제시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50	처리장치(소호 제 8471.41 호 또는 제 8471.49 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 · 입력장치 및 출력장치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60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동일하우징 속에 기억장치를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72.30	우편물의 분류기 또는 접음기 또는 우편물을 봉투나 밴드에 삽입하는 기계와 우편물의 개봉·봉함 또는 실링기 및 우표의 첨부 또는 소인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3	제 8469 호부터 제 8472 호까지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8473.10	제 8469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3.2	제 8470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73.21	소호 제 8470.10 호·제 8470.21 호 또는 제 8470.29 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3.30	제 8471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3.40	제 8472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3.50	제 8469 호부터 제 8472 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중에서 두 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합기 또는 반죽기(고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석·광석 또는 기타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 조괴기·형입기 또는 성형기(고체의 광물성 연료·세라믹 페이스트·굳지 아니한 시멘트·석고 또는 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기타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에 한한다), 주물용 사형(砂型)의 성형기	
8474.10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 또는 세척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20	파쇄기 또는 분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3	혼합기 또는 반죽기	
8474.31	콘크리트 혼합기 또는 모르타르 혼합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32	역청질과 광물성재료의 혼합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80	기타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5	전기 또는 전자램프·튜브 또는 밸브 또는 플래시벌브(외피가 유리제인 것에 한한다)의 조립기계, 유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또는 열간가공용의 기계	
8475.10	전기 또는 전자램프·튜브 또는 밸브 또는 플래시벌브(외피가 유리제인 것에 한한다)의 조립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5.2	유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또는 열간가공용의 기계	
8475.21	광섬유 및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5.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6	물품의 자동판매기(예: 우표·담배·식품 또는 음료의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자동판매기)(화폐교환기를 포함한다)	
8476.2	음료 자동판매기	
8476.21	가열장치 또는 냉장장치를 갖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476.29 호부터 제 8476.89 호까지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6.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476.21 호, 제 8476.81 호 또는 제 8476.89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6.8	기타 기계	
8476.81	가열장치 또는 냉장장치를 갖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476.21 호, 제 8476.29 호 또는 제 8476.89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6.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호 제 8476.21 호부터 제 8476.81 호까지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	고무 또는 플라스틱의 가공용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용도의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477.10	사출 성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20	압출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30	취입 성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8	담배의 조제 또는 제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478.10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8.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기(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8479.10	토목공사·건축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20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의 추출 또는 조제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30	파티클보드 또는 건축용의 섬유판(목재 또는 기타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에 한한다)의 제조용 프레스와 목재 또는 코르크 처리용의 기타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40	진공성형기 및 기타 열성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5	기타 성형기	
8477.51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 또는 재생기 또는 기타 이너튜브 성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80	기타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8	기타 기기	
8479.81	금속처리용의 것(전선권선기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82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체·시프팅기·균질기·유화기 또는 교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금속(잉곳용의 것은 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물질·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8480.10	금속주조용의 주형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40	로프 또는 케이블 제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50	산업용 로보트(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60	증발식 에어쿨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7	탑승교	
8479.71	공항에서 사용되는 종류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7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60	광물성물질 성형용의 주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7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8480.71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7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	
8481.10	감압밸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20	유압 전송용 또는 공기압 전송용의 밸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20	주형 베이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30	주형 제조용의 모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4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 성형용의 주형	
8480.41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50	유리 성형용의 주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20	원추형 롤러베어링(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30	구형 롤러베어링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40	니들 롤러베어링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50	기타 원통형 롤러베어링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80	기타(볼/롤러베어링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30	체크(논리턴)밸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40	안전밸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80	기타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	
8482.10	볼베어링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한한다). 플레인샤프트베어링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기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40	기어와 기어링(날이 붙은 휠 · 체인스프로켓과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먼트는 제외한다),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와 기타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50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60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90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 및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 전동용 엘리먼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4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기타 재료와 혼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에 한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9	부분품	
8482.91	볼 · 니들 및 롤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및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	
8483.10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20	베어링하우징(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을 갖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30	베어링하우징(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을 갖추지 아니한 것에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 또는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에 한한다), 메커니컬 실	
8484.10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기타 재료와 혼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4.20	메커니컬 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4.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6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 · 반도체디바이스 · 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 9 호다목에 명시된 기계와 기기, 부분품과 부속품	
8486.10	보울 또는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6.20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6.3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6.40	이 류의 주 제 9 호다목에 명시된 기계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6.90	부분품 및 부속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7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 · 절연체 · 코일 · 접촉자 또는 기타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487.10	선박 또는 보트의 추진기와 이들의 블레이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	**제 85 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8501.10	전동기(출력이 37.5 와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20	교류 · 직류 겸용 전동기(출력이 37.5 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3	기타 직류 전동기, 직류발전기	
8501.31	출력이 750 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32	출력이 750 와트 초과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33	출력이 75 킬로와트 초과 3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34	출력이 37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40	기타 단상의 교류전동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5	기타 다상의 교류전동기	
8501.51	출력이 750 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52	출력이 750 와트 초과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53	출력이 7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6	교류발전기	
8501.61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62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63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64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8502.1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디젤 또는 세미디젤엔진에 한한다)	
8502.11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12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13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20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3	기타 발전세트	
8502.31	풍력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39	기타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제 8504.22 호부터 제 8504.50 호까지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22	용량이 65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504.10 호, 제 8504.21 호 또는 제 8504.23 호부터 제 8504.50 호까지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23	용량이 10,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504.10 호부터 제 8504.22 호까지 또는 제 8504.31 호부터 제 8504.50 호까지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40	전기 회전변환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3.00	부분품(제 8501 호 또는 제 8502 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	변압기 · 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8504.10	방전등 또는 방전관용의 안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504.21 호부터 제 8504.50 호까지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2	유입식의 변압기	
8504.21	용량이 6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504.10 호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504.3	기타 변압기	
8504.31	용량이 1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504.32 호부터 제 8504.34 호까지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32	용량이 1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6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504.10 호부터 제 8504.31 호까지 또는 제 8504.33 호부터 제 8504.50 호까지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33	용량이 16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504.10 호부터 제 8504.32 호까지 또는 제 8504.34 호부터 제 8504.50 호까지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34	용량이 5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504.10 호부터 제 8504.33 호까지, 제 8504.40 호 또는 제 8504.50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40	정지형 변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504.10 호부터 제 8504.34 호까지 또는 제 8504.50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50	기타 유도자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504.10 호부터 제 8504.40 호까지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5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홀더, 전자석커플링·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	
8505.1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8505.11	금속제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5.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5.20	전자석 커플링·클러치와 브레이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상일 것
8505.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	일차전지와 일차배터리	
8506.10	이산화망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30	산화수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40	산화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50	리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506.60	에어징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80	기타 일차전지와 일차배터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507.1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의 연산(鉛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20	기타 연산 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30	니켈-카드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40	니켈-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50	니켈-수소 합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60	리튬-이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80	기타 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9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하며, 제 8508 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	
8509.4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 또는 채소즙 추출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9.80	기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0	면도기 · 이발기 및 모발제거기[전동기를 자장(自藏)한 것에 한한다]	
8510.10	면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0.20	이발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8	진공청소기	
8508.1	전동기를 자장한 것	
8508.11	출력이 1,500 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기타 20 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508.19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8.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508.11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8.60	기타 진공청소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8.7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0.30	모발제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0.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 또는 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 · 자석발전기 · 점화코일 · 점화플러그 · 예열플러그 · 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 · 교류발전기)와 개폐기	
8511.10	점화플러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20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자석발전기, 마그네틱 플라이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30	배전기, 점화코일	6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40	시동전동기와 겸용의 시동발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50	기타 발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80	기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2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 8539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윈드스크린와이퍼 · 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3	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에 한하며, 제 8512 호의 조명기기는 제외한다)	
8513.10	전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4	공업용 또는 실험실용 전기식 노와 오븐(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손실식의 것을 포함한다), 기타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손실식 가열기	
8514.10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4.20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손실식의 노와 오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512.10	자전거에 사용되는 종류의 조명용 또는 시각 신호용 기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512.20 호 또는 제 8512.30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2.20	기타 조명용 또는 시각신호용기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512.10 호 또는 제 8512.30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2.30	음향 신호용 기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512.10 호 또는 제 8512.20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2.40	윈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와 제무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2.90	부분품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2	금속의 저항용접용 기기	
8515.21	전자동식 또는 반자동식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3	금속의 아크(플라즈마아크를 포함한다) 용접기기	
8515.31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80	기타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4.30	기타 노와 오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4.40	기타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손실식 가열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식 또는 광자빔식, 초음파식, 전자빔식, 자기펄스식 또는 플라즈마아크식의 납땜 또는 용접용의 기기(절단기능을 가진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금속 또는 서메트의 가열분사용의 전기식 기기	
8515.1	납땜용의 기기	
8515.11	납땜용의 인두와 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3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 또는 손건조기	
8516.31	헤어드라이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32	기타 이용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33	손 건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40	전기다리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5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전기난방기기와 전기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컬링통히터) 및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 8545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16.10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가열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2	전기난방기기와 전기토양가열기	
8516.21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51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타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 8443 호, 제 8525 호, 제 8527 호 또는 제 8528 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는 제외한다)	
8517.1	전화기 세트(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8517.11	유선전화기 세트(코드리스 핸드세트가 있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12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18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6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통신망 또는 원거리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상일 것
8516.60	기타 오븐, 쿠커·조리판·보일링링·그릴러와 로스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7	기타 전열기기	
8516.71	커피 또는 차 끓이는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72	토스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7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80	전열용 저항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2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518.21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22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30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40	전기 가청주파증폭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8517.61	기지국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62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기(교환기 및 라우팅기기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6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7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전기 가청주파증폭기, 전기 음향증폭세트	
8518.10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상일 것
8519.8	기타 기기	
8519.81	자기식 · 광학식 또는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9.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1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521.10	마그네틱 테이프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2	제 8519 호 또는 제 8521 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8522.10	픽업 카트리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50	전기 음향증폭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9	음성 녹음 또는 재생 기기	
8519.20	동전 · 지폐 · 은행카드 · 토큰 또는 기타의 지급 수단으로 작동하는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9.30	턴 테이블(레코드 데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9.50	전화응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523.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5	반도체 매체	
8523.51	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52	"스마트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8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5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	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 여부를 불문하고, 디스크의 제조용의 매트락과 마스터를 포함하되, 제 37 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8523.2	자기식 매체	
8523.21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자장한 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4	광학식 매체	
8523.41	기록이 안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8525.50	송신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8517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5.60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8517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5.80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6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	
8526.10	레이더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6.9	기타	
8526.91	항행용 무선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6.92	무선원격조절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 또는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내에 결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527.1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외부전원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8527.12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13	기타 기기(음성기록기 또는 음성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2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자동차용으로서 외부전원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또는 음성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528.4	음극선관 모니터	
8528.41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5	기타 모니터	
8528.51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6	프로젝터	
8528.61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527.21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9	기타	
8527.91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92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0	철도 · 궤도 · 도로 · 내륙수로 · 주차장 · 항만 또는 공항용의 전기식 신호 · 안전 또는 교통관제기기(제 8608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0.10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0.80	기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0.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1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 · 사이렌 · 표시반 · 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제 8512 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7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또는 음성기록 또는 영상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528.71	영상디스플레이 또는 스크린을 갖추도록 설계제작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72	기타(천연색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73	기타(단색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9	부분품(제 8525 호부터 제 8528 호까지에 열거된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8529.10	각종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와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한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제 8530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1.10	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1.20	액정표시단자(LCD) 또는 발광다이오드단자(LED)가 결합된 표시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1.80	기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	축전기[고정식 · 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세트)에 한한다]	
8532.10	고정식 축전기로 50/60 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무효전력 용량이 0.5 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2	기타 고정식 축전기	
8532.21	탄탈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22	알루미늄 전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23	세라믹 유전체(단층)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24	세라믹 유전체(다층)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25	종이 또는 플라스틱 유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29	기타	6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533.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3.3	권선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한다)	
8533.31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3.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3.40	기타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4.00	인쇄회로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30	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세트) 축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3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	
8533.10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콤퍼지션형 또는 필름형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3.2	기타 고정식 저항기	
8533.21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상일 것
8535.40	피뢰기 · 전압제한기와 서지억제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 또는 보호용 또는 접속용 전기식 기기(예: 개폐기 · 계전기 · 퓨즈 · 서지억제기 · 플러그 · 소켓 · 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 · 접속함)(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광섬유 · 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	
8536.10	퓨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20	자동차단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30	전기회로보호용의 기타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	전기회로의 개폐용 또는 보호용 또는 접속용 전기식 기기(예: 개폐기 · 퓨즈 · 피뢰기 · 전압제한기 · 서지억제기 · 플러그와 기타 커넥터 · 접속함)(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8535.10	퓨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2	자동차단기	
8535.21	전압이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30	격리용 개폐기와 회로단속용 개폐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4	계전기	
8536.41	전압이 60 볼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50	기타 개폐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6	램프홀더·플러그와 소켓	
8536.61	램프홀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70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90	기타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7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 기반(基盤)(제 8535 호 또는 제 8536 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 90 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 8517 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8537.10	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7.20	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8	부분품(제 8535 호·제 8536 호 또는 제 8537 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8538.10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 기반(제 8537 호의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539.22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3	방전램프(자외선램프는 제외한다)	
8539.31	형광램프(열음극형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32	수은 또는 나트륨증기 램프, 메탈 할라이드 램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4	자외선 또는 적외선램프, 아크-램프	
8539.41	아크 램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물품용에 한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	전기식의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8539.10	실드빔 램프유닛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2	기타 필라멘트 램프(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는 제외한다)	
8539.21	텅스텐 할로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22	기타(전력이 200 와트 이하이고 전압이 1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539.29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4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단색의 것), 데이터/그래픽 직시관(천연색의 것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 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60	기타 음극선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7	마이크로웨이브관(예: 자전관·속도변조관·진행파관·카시노트론)(그리드제어관은 제외한다)	
8540.71	자전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7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8	기타 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	열전자관·냉음극관 또는 광전관(예: 진공관 또는 증기 또는 가스를 봉입한 관·수은아크정류관·음극선관·텔레비전용 촬상관)	
8540.1	텔레비전용 음극선관(영상 모니터용 음극선관을 포함한다)	
8540.11	천연색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12	단색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20	텔레비전용 촬상관, 영상변환관과 영상증강관, 기타 광전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540.81	수신관 또는 증폭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9	부분품	
8540.91	음극선관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또는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10	다이오드(감광성 다이오드 또는 발광다이오드는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2	트랜지스터(감광성 트랜지스터는 제외한다)	
8541.21	전력낭비율이 1 와트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30	사이리스터, 다이액 및 트라이액(감광성 디바이스는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또는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50	기타 반도체 디바이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90	부분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8543.10	입자가속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20	신호발생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30	전기도금·전기분해 또는 전기영동(泳動)용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60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90	부분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	전자집적회로	
8542.3	전자집적회로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과 타이밍 회로 또는 기타 회로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32	메모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33	증폭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기타 와이어링 세트(자동차 · 항공기 또는 선박용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4	기타 전기도체(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8544.42	접속자가 부착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60	기타 전기도체(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70	광섬유 케이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70	기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 · 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8544.1	권선용 전선	
8544.11	동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20	동축케이블과 기타 동축 전기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5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기타의 흑연 또는 탄소제품(전기용의 것에 한하며, 금속의 함유여부를 불문한다)	
8545.1	전극	
8545.11	노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5.20	브러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6	애자(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8546.10	유리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6.20	도자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7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 8546 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卑)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에 한한다)	
8547.10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7.20	플라스틱제의 절연용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86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4.00	철도 또는 궤도의 유지 또는 보수용의 차량(자주식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예: 공작차 · 기중기차 · 밸러스트탬퍼 · 트랙라이너 · 검사차 및 궤도검사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5.00	철도 또는 궤도용의 객차(자주식의 것은 제외한다), 수하물차 · 우편차 및 기타의 철도 또는 궤도용 특수용도차(자주식의 것과 제 8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6	철도 또는 궤도용의 화차(자주식의 것은 제외한다)	
8606.10	탱크차 및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6.30	자기양하식의 화차(소호 제 8606.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6.9	기타	
8606.91	덮개가 있는 것으로서 밀폐되어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6.92	무개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7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또는 차량의 부분품	
8607.1	보우기 · 비셀보우기 · 차축과 차륜 및 이들의 부분품	
8607.11	구동식의 보우기와 비셀보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7.12	기타 보우기와 비셀보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7.19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7.2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8607.21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8	일차전지, 일차배터리 및 전기식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일차배터리 및 전기식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548.10	일차전지, 일차배터리 및 전기식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일차배터리 및 전기식축전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4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17 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제 86 류 – 제 89 류)	
86	**제 86 류**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각종 교통신호용기기**	
8601	철도용 기관차(외부전원 또는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에 한한다)	
8601.10	외부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1.20	전기식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2	기타의 철도용 기관차, 탄수차	
8602.10	디젤 전기기관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3	자주식의 철도 또는 궤도용 객차 및 화차(제 8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8603.10	외부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9.00	콘테이너(액체운반용 콘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제작되고 구조를 갖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	제 87 류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701	트랙터(제 8709 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8701.10	보행운전형 트랙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20	세미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 트랙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30	무한궤도식 트랙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7.30	훅과 기타의 연결장치·완충장치 및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7.9	기타	
8607.91	기관차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8.00	철도 또는 궤도 선로용 장치물,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 또는 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신호·안전 또는 교통관제용의 기기,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초과 1,50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초과 3,00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3	기타 차량[압축점화식의 피스톤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에 한한다]	
8703.31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2	10 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의 자동차	
8702.10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 차량(제 8702 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8703.10	설상주행용으로 특수 설계제작된 차량, 골프용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2	기타 차량(불꽃점화식의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에 한한다)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704.1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2	기타[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에 한한다]	
8704.21	총중량이 5 톤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22	총중량이 5 톤 초과 20 톤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23	총중량이 20 톤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3	기타(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에 한한다)	
8704.31	총중량이 5 톤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초과 2,50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33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	화물운송용 자동차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4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90	기타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6.00	엔진을 갖춘 섀시(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자동차용에 한한다)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7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자동차용에 한한다)	
8707.10	제 8703 호의 차량용의 것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7.90	기타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상일 것
8704.32	총중량이 5 톤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 또는 화물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 기중기차, 소방차,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도로청소차, 살포차, 이동공작차, 이동방사선차)	
8705.10	기중기차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20	이동식 시추용의 데릭차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30	소방차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5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기타 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과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70	로드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80	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8708.91	방열기와 그 부분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2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그 부분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8708.10	완충기와 그 부분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2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8708.21	안전벨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30	브레이크와 서보브레이크, 그 부분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4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0.00	전차와 기타 장갑차량(자주식의 것에 한하며, 무기의 장비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사이드카	
8711.10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20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초과 250 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3	클러치와 그 부분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4	운전대, 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 그 부분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5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 그 부분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9	공장·창고·부두 또는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의 것으로 권양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되지 아니한 자주식의 작업트럭,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이들의 부분품	
8709.1	차량	
8709.11	전기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 8711 호부터 제 8713 호까지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	
8714.10	모터사이클의 것(모페드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20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	기타	
8714.91	프레임과 포크 및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30	실린더용량이 250 시시 초과 500 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40	실린더용량이 500 시시 초과 800 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50	실린더용량이 800 시시를 초과하는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2.00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이륜자전거와 기타 자전거(배달용 3 륜 자전거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713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기타 다른 방식의 기계구동식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713.1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5.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	
8716.1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의 것으로서 주거 또는 캠핑용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20	농업용의 자동적재식 또는 자동 양하식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3	화물수송용의 기타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716.31	탱커 트레일러와 탱커 세미트레일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39	기타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714.92	휠 림과 스포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3	허브(코스터 브레이킹허브와 허브브레이크는 제외한다) 및 프리휠 스프로켓 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4	브레이크(코스터 브레이킹허브와 허브브레이크를 포함한다) 및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5	안장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6	페달과 크랭크기어 및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포함한다)와 서보비틀 및 우주선 발진로켓	
8802.1	헬리콥터	
8802.11	자중이 2,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12	자중이 2,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20	자중이 2,000 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기타의 항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30	자중이 2,000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00 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기타의 항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40	자중이 15,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기타 항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40	기타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80	기타의 차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	제 88 류 항공기,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8801.00	기구와 비행선, 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기타 무동력 항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	기타 항공기(예: 헬리콥터·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로토슈트,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5	항공기 발진기어, 갑판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기어, 지상비행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	
8805.10	항공기 발진기어와 그 부분품, 갑판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기어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5.2	지상비행훈련장치와 그 부분품	
8805.21	모의 공중전장치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	**제 89 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8901	순항선 · 유람선 · 페리보트 · 화물선 · 부선 및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 또는 화물수송용에 한한다)	
8901.10	순항선 · 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각종의 페리보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802.60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과 서보비틀 및 우주선 발진로켓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3	부분품(제 8801 호 또는 제 8802 호의 것에 한한다)	
8803.10	프로펠러와 로터 및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3.20	기체지지부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3.30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의 기타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4.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 및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1.20	탱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1.30	냉동선(소호 제 8901.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1.90	기타 화물선과 화객선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2.00	어선,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의 선박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3	요트와 유람 또는 운동용의 기타 선박,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8903.10	인플랫터블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903.9	기타	
8903.91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903.92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90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904.00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5	조명선 · 소방선 · 준설선 · 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기타 특수선박, 부선거,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 또는 작업대	
8905.10	준설선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5.20	시추대 또는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5.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6	기타 선박(군함 및 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8906.10	군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1.40	유리제의 안경렌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1.50	기타 재료제의 안경렌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2	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기타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은 제외한다)	
9002.1	대물렌즈	
9002.11	카메라용·영사기용 또는 사진 확대기 또는 사진축소기용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2.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2.20	필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2.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3	안경·고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용 테와 장착구 및 이들의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9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907	기타 물에 뜨는 구조물(예: 부교·탱크·코퍼댐·부잔교·부표 및 수로부표)	
8907.10	인플랫터블식의 부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9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908.00	선박과 기타 물에 뜨는 구조물(해체용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8 부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 90 류 – 제 92 류)	
90	**제 90 류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 의료용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01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 8544 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제의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프리즘·반사경과 기타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용품은 제외한다)	
9001.10	광섬유·광섬유다발과 광섬유 케이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1.20	편광재료제의 쉬트와 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1.30	콘택트렌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부분품	
9003.1	테와 장착구	
9003.11	플라스틱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3.19	기타 재료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4	시력교정용·보호용 또는 기타용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9004.10	선글라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5	쌍안경·단안경, 기타 광학식의 망원경과 이들의 장착구, 기타의 천체관측용 기기와 이의 장착구(전파관측용의 기기는 제외한다)	
9005.10	쌍안경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5.80	기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5.90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6	사진기(영화용의 것은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 8539 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	
9006.10	인쇄제판용 사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30	수중촬영용·공중측량용 또는 내과용 또는 외과용으로 특수 설계제작된 사진기, 법정비교용 사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40	즉석인화사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5	기타 사진기	
9006.51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파인더[싱글렌즈레플렉스(SLR)]를 갖춘 것(폭이 35 밀리미터 이하인 롤필름용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52	기타(폭이 35 밀리미터 미만인 롤필름용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53	기타(폭이 35 밀리미터인 롤필름용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6	사진용 섬광기구와 섬광전구	
9006.61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6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9	부분품과 부속품	
9006.91	카메라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6.99	기타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의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네가토스코우프, 영사용 스크린	
9010.10	롤상의 사진용(영화용을 포함한다) 필름이나 감광지를 자동현상하는 기기 또는 현상된 필름을 사진용 감광지에 자동노출시키는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0.5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현상실용의 기타 기기, 네가토스코우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0.60	영사용 스크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0.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1	복합 광학 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 또는 마이크로 영사용의 것을 포함한다)	
9011.10	입체현미경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1.20	기타 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 또는 마이크로 영사용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1.80	기타 현미경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1.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2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 회절기	
9012.10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 회절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2.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7	영화용의 촬영기와 영사기(음성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007.10	촬영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7.20	영사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7.9	부분품과 부속품	
9007.91	촬영기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7.92	영사기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8	투영기·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영화용의 것은 제외한다)	
9008.50	프로젝터, 확대기 및 축소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8.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3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는 제외한다), 기타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013.10	무기용의 망원조준기, 잠망경, 이 류 또는 제 16 부의 기기 부분품용의 망원경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3.2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는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3.80	기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3.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4	방향탐지용 컴퍼스, 기타 항행용 기기	
9014.10	방향탐지용 컴퍼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4.20	항공용 또는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는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4.80	기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4.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5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의 것을 포함한다)·수로측량기기·해양측량기기·수리계측기기·기상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측기기 또는 지구물리학용기기(컴퍼스는 제외한다), 거리측정기	
9015.10	거리측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5.20	경위의와 시거의(태코미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5.30	수준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5.40	사진측량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5.80	기타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5.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6.00	감량(感量) 50 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추의 유무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7	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예: 제도기·축소확대기·분도기·제도세트·계산척·계산반), 수지식의 길이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017.10	제도판을 갖춘 제도기(자동식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7.20	기타 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7.30	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와 게이지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14	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20	자외선 또는 적외선 응용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3	주사기 · 바늘 · 카테터 · 케눌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	
9018.31	주사기(바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32	관 모양의 금속제 바늘 및 봉합용 바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7.80	기타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7.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 · 기타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	
9018.1	전기식 진단용 기기(기능검사용 또는 생리적 변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	
9018.11	심전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12	초음파 영상진단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13	자기공명 촬영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9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흡입기 · 산소흡입기 · 에어로졸치료기 · 인공호흡기 또는 기타 치료용 호흡기기	
9019.10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9.20	오존 흡입기 · 산소 흡입기 · 에어로졸 치료기, 인공 호흡기 또는 기타 치료용 호흡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0.00	기타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아니한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 · 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 및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및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 기기	
9021.10	정형외과용 또는 골절치료용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2	의치와 치과용품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4	치과용의 기타 기기	
9018.41	치과용 드릴엔진(하나의 베이스 위에 기타의 치과기기를 부착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50	안과용의 기타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90	기타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엑스선관과 기타 엑스선 발생기·고압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9022.1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를 포함한다)	
9022.12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2.13	기타(치과용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2.14	기타(내과용·외과용 또는 수의용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2.19	기타 용도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2.2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를 포함한다)	
9022.21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2.29	기타 용도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2.30	엑스선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2.90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9021.21	의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3	기타 인조의 인체 부분	
9021.31	인조관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40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50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3.00	전시용으로 설계제작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 또는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4	재료(예: 금속·목재·직물·종이·플라스틱)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 또는 기타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	
9024.10	금속 시험용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4.80	기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4.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5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9025.1	온도계와 고온계(다른 기기와 결합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025.11	액체를 넣은 것(직시식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5.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5.80	기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5.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6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측정계)(제 9014 호·제 9015 호·제 9028 호 또는 제 9032 호의 기기는 제외한다)	
9026.10	액체의 유량 또는 액면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6.20	압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6.80	기타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6.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7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 · 포로서티 · 팽창 · 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열 · 소리 또는 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	
9027.10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7.2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7.30	분광계 · 분광광도계 및 분광사진기(자외선 · 가시광선 · 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7.50	기타 기기(자외선 · 가시광선 · 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7.80	기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7.90	마이크로톰,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8	기체 · 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함한다)	
9028.10	기체용 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8.20	액체용 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8.30	전기용 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8.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9	적산회전계 · 생산량계 · 택시미터 · 주행거리계 · 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 9014 호 또는 제 9015 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우프	
9029.10	적산회전계 · 생산량계 · 택시미터 · 주행거리계 · 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9.20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스트로보스코우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9.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0	오실로스코우프 · 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 9028 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 · 베타선 · 감마선 · 엑스선 · 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9030.10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20	오실로스코우프와 오실로그래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3	전압 · 전류 · 저항 또는 전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9030.31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32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33	기타(기록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39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40	전기통신용으로 특수 설계제작된 기타 기기(예: 누화계 · 게인측정계 · 만곡률계 · 잡음전압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8	기타 기기	
9030.82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6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1.80	기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1.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2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9032.10	온도 자동조정용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2.20	매노우스타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2.8	기타의 기기	
9032.81	액압식 또는 공기식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2.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2.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3.00	제 90 류의 기계 · 기기 · 장치 또는 장비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9030.84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1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윤곽 투영기	
9031.10	균형시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1.20	테스트벤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1.4	기타 광학식의 기기	
9031.41	반도체 웨이퍼 또는 소자검사용 또는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 또는 레티클 검사용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1.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	**제 91 류 시계와 그 부분품**	
9101	손목시계·회중시계 및 기타 휴대용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스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9101.1	손목시계(전기구동식의 것에 한하며, 스톱워치의 기능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101.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1.2	기타 손목시계(스톱워치의 기능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101.21	자동권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1.9	기타	
9101.91	전기구동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2	손목시계·회중시계 및 기타 휴대용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 91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9102.1	손목시계(전기구동식의 것에 한하며, 스톱워치의 기능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102.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2.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2.2	기타 손목시계(스톱워치의 기능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102.21	자동권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2.9	기타	
9102.91	전기구동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3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를 갖춘 클록(제 91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9103.10	전기구동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4.00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 또는 선박용의 계기반 클록 및 이와 유사한 클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5	기타 클록	
9105.1	자명종시계	
9105.11	전기구동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5.2	벽 시계	
9105.21	전기구동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5.9	기타	
9105.91	전기구동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6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 및 시계의 무브먼트나 동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서 시간을 측정·기록 또는 기타 다른 방식으로 표시하는 기기(예: 타임레지스터·타임레코더)	
9106.10	타임레지스터, 타임레코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7.00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 또는 동기전동기를 갖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8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에 한한다)	
9108.1	전기구동식의 것	
9108.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또는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8.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1	휴대용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	
9111.10	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케이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1.20	비(卑)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1.80	기타의 케이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2	클록케이스 및 이 류의 기타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	
9112.20	케이스	4 단위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910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8.20	자동권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9	클록무브먼트(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에 한한다)	
9109.10	전기구동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0	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미조립 또는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에 한한다)(무브먼트세트), 불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조립된 것에 한한다), 러프한 시계의 무브먼트	
9110.1	휴대용시계의 것	
9110.11	완전한 무브먼트(미조립 또는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에 한한다)(무브먼트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0.12	불완전한 무브먼트(조립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0.19	러프 무브먼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9114.1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4.30	문자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4.40	지판과 브리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	제 92 류 악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9201	피아노(자동피아노를 포함한다), 하프시코드와 기타 건반이 있는 현악기	
9201.10	업라이트 피아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1.20	그랜드 피아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2	기타 현악기(예: 기타 · 바이올린 · 하프)	
9202.10	활을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5	관악기(예: 건반이 있는 파이프 오르간 · 아코디언 · 클라리넷 · 트럼펫 · 백파이프)(페어그라운드오르간과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은 제외한다)	
9205.10	금관악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6.00	타악기(예: 북 · 목금 · 심벌 · 캐스터넷트 · 마라카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7	전기적으로 음이 발생 또는 증폭되는 악기(예: 오르간 · 기타 · 아코디언)	
9207.10	건반악기(아코디온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8	뮤직박스, 유원지 오르간, 음유악기, 휘파람, 입으로 부는 악기	
9208.10	뮤직박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9	악기의 부분품(예: 기계식 악기의 무브먼트)과 부속품(예: 메트로놈, 음차, 피치파이프); 모든 종류 악기용 메커니컬 사운드 발생장치의 부분품과 부속품	
9209.30	현악기용 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9.91	건반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피아노용 현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9.92	제 9202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9.94	제 9207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11	휴대용시계줄 · 휴대용시계밴드 및 휴대용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9211.10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11.20	비(卑)금속제의 것(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1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3	휴대용시계줄 · 휴대용시계밴드 및 휴대용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9113.10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3.20	비(卑)금속제의 것(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4	기타 시계의 부분품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92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8	뮤지컬박스 · 페어그라운드오르간 ·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 · 기계식 자명조 · 뮤지컬소오와 기타의 악기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각종의 데코이 콜, 휘슬 · 호각과 기타 입으로 불어서 나는 소리로 신호하는 기구	
9208.10	뮤지컬박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9	악기의 부분품(예: 뮤지컬박스용의 메카니즘)과 부속품(예: 기계식 악기용의 카드 · 디스크와 롤), 박절기 · 음차와 각종의 조율관(調律管)	
9209.30	악기의 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9.9	기타	
9209.91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9.92	제 9202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9.94	제 9207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9 부 무기 및 총포탄,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 93 류)	
93	제 93 류 무기 및 총포탄,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01	군용무기(리볼버 · 피스톨과 제 9307 호의 무기는 제외한다)	
9301.10	포병무기(예: 평사포 · 곡사포 및 박격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1.20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 및 그와 유사한 발사장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2.00	리볼버와 피스톨(제 9303 호 또는 제 93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3	기타 화기와 폭약으로 점화되는 이와 유사한 장치(예: 경기용의 산탄총과 라이플 · 총구장전화기 · 베리식 피스톨과 신호용 화염만을 발생하는 기타 장치 · 공포탄용 피스톨 및 리볼버 · 무통도살기 · 줄발사총)	
9303.10	총구장전화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3.20	기타 스포츠용 · 수렵용 또는 표적사격용의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상일 것
9305.9	기타	
9305.91	제 9301 호의 군용무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6	폭탄 · 유탄 · 어뢰 · 지뢰 · 미사일 및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 · 기타 총포탄 · 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 및 탄약안에 충전되는 와드를 포함한다)	
9306.2	산탄총용 탄약과 그 부분품, 공기총 탄환	
9306.21	탄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6.30	기타 탄약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3.30	기타 스포츠용 · 수렵용 또는 표적사격용의 라이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4.00	기타 무기(예: 스프링총, 공기총 또는 가스총 및 피스톨, 경찰봉)(제 9307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5	부분품과 부속품(제 9301 호부터 제 9304 호까지의 것에 한한다)	
9305.10	리볼버 또는 피스톨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5.20	산탄총 또는 라이플의 것(제 9303 호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상일 것
9401.30	회전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40	침대겸용의자(가든시트 또는 캠핑용 장비는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5	등나무·버드나무·대나무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의자	
9401.51	대나무 또는 등나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6	기타 의자(프레임이 목제인 것에 한한다)	
9401.61	의자의 속·용수철·카바등을 댄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7.00	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20 부 잡품(제 94 류 – 제 96 류)	
94	**제 94 류** **가구, 침구·메트리스·메트리스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와 램프,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9401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 9402 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9401.10	항공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의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20	자동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의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9402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가구류(예: 수술대·검사대·기계식 장비를 갖춘 병원용 침대·치과용 의자), 뒤로 젖히고 상하조절 및 회전기구를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이들의 부분품	
9402.10	치과용 의자·이발용 의자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자 및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	기타 가구와 그 부분품	
9403.10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종류의 금속제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20	기타 금속제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30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종류의 목제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상일 것
9401.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7	기타 의자(프레임이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9401.71	의자의 속·용수철·커버등을 댄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7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80	기타 의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4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누비이불·우모이불·쿠션·푸우프 및 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라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	
9404.10	매트리스 서포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4.2	매트리스	
9404.21	셀룰로오스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4.29	기타 재료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4.30	침낭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5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 및 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405.10	샹데리아와 기타 천장용 또는 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기구(공공장소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40	주방에서 사용되는 종류의 목제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50	침실에서 사용되는 종류의 목제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60	기타 목제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70	플라스틱제의 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8	기타 재료제의 가구(등나무·버드나무·대나무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제의 것을 포함한다)	
9403.81	대나무 또는 등나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9	부분품	
9405.91	유리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92	플라스틱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6.00	조립식 건축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	**제 95 류 완구·게임용구 및 운동용구,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503.00	세발자전거 · 스쿠터 · 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각종의 퍼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4	비디오게임콘솔 및 비디오게임기 · 오락용구 · 테이블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20	전기식의 테이블 · 책상 · 침대 또는 마루스탠드 램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30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용 조명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40	기타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5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60	조명용 사인 ·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과 자동식의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	
9504.20	각종의 당구용구와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4.30	기타의 게임(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 또는 기타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에 한하며 자동식 볼링장용구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4.40	오락용 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4.50	비디오게임콘솔 및 비디오게임기(소호 제 9504.30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5	축제·카니발 또는 기타 오락용품(마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	
9505.10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5.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	
9506.1	설상스키와 기타 설상스키용품	
9506.11	스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12	스키파스닝(스키바인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2	수상스키·파도타기널판·세일보드와 기타 수상운동용구	
9506.21	세일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3	골프채와 기타의 골프용품	
9506.31	골프채(완제품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32	공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40	탁구용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5	테니스용·배드민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라켓(줄을 맨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506.51	로온테니스 라켓(줄을 맨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6	공(골프공과 탁구공은 제외한다)	
9506.61	로온테니스 공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62	공기를 넣어 부풀게 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70	아이스 스케이트와 롤러 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9	기타	
9506.91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9603.2	칫솔·면도용 브러시·헤어브러시·네일브러시·아이래쉬 브러시 및 기타 인체용의 화장용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9603.21	칫솔(덴탈플레이트 브러시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3.30	회화용의 붓·필기용의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의 붓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3.40	페인트용·디스템퍼용·바니시용 또는 이와 유사한 브러시(소호 제 9603.30 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3.50	기타 브러시(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4.00	수동식의 체 및 어레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5.00	개인용의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 또는 신발 또는 의류 청소용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6	단추·프레스파스너·스냅파스너와 프레스스터드·단추의 몰드와 이들의 부분품, 단추블랭크	
9606.10	프레스파스너·스냅파스너와 프레스스터드 및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6.2	단추	
9606.21	플라스틱제의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6.22	비(卑)금속제의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950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7	낚싯대·낚시바늘과 기타 낚시용구, 낚시용의 망·포충망과 이와 유사한 망, 유인용 새(제 9208 호 또는 제 9705 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 또는 사격 용구	
9507.10	낚싯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7.20	낚싯바늘(낚시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7.30	낚시 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8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기타 흥행장용품, 순회서커스용·순회동물원용 용품, 순회극장용의 용품	
9508.10	순회서커스용과 순회동물원용의 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	**제 96 류 잡품**	
9601	가공한 아이보리·뼈·귀갑·뿔·사슴뿔·산호·자개 및 기타 동물성의 조각용 재료 및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	
9601.10	가공한 아이보리와 그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2.00	가공한 식물성 또는 광물성의 조각용 재료 및 그 제품, 성형품 또는 조각품(왁스·스테아린·천연수지 또는 모델링페이스트제의 것에 한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성형품 또는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젤라틴(제 3503 호의 젤라틴은 제외한다)과 비경화젤라틴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3	비·브러시(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모프와 깃 먼지털이, 비 또는 브러시 제조용으로 묶었으며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스퀴지(롤러스퀴지는 제외한다)	
9603.10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 또는 기타의 식물성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에 한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9608.60	볼펜용의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9	기타	
9608.91	펜촉과 닙포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9	연필(제 9608 호의 펜슬은 제외한다) · 크레용 · 연필심 · 파스텔 · 도화용의 목탄 · 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초크와 재단사용의 초크	
9609.10	연필과 크레용(견고한 집속에 심을 넣은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9.20	연필심(검은색 또는 색깔이 있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0.00	석판과 보드(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면을 갖춘 것에 한하며, 틀의 유무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1.00	일부인 · 봉합용 스탬프 또는 넘버링 스탬프 및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에 날인 또는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의 것에 한한다), 수동식의 컴포징 스틱 및 컴포징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의 인쇄용 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2	타자기용 리본 또는 이와 유사한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달리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것을 포함하며, 스풀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잉크 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는지 상자들이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612.10	리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2.20	잉크 패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3	담배 라이터와 기타 라이터(기계식 또는 전기식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라이터 돌과 심지는 제외한다)	
9613.10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6.30	단추의 몰드와 기타단추의 부분품, 단추블랭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7	슬라이드파스너와 그 부분품	
9607.1	슬라이드파스너	
9607.11	체인스쿠프가 비(卑)금속제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7.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7.2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8	볼펜, 팁이 펠트로 된 것과 기타 포러스팁으로 된 펜과 마커, 만년필 · 스틸로그래프 펜과 기타 펜, 철필, 프로펠링 또는 슬라이딩 펜슬, 펜홀더 · 펜슬홀더와 이와 유사한 홀더, 이들의 부분품(캡과 크립을 포함하며 제 9609 호의 것은 제외한다)	
9608.10	볼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8.20	팁이 펠트로 된 것과 기타 포러스팁으로 된 펜과 마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8.30	만년필 · 스틸로그래프 펜과 기타의 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40	프로펠링 또는 슬라이딩 펜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8.50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6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와 두부, 화장용 분첩과 패드	
9616.10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와 두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6.20	화장용 분첩과 패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7.00	보온병과 기타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에 한한다), 그 부분품(유리제의 내부용기를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8.00	마네킹 인형과 기타 모델형 인형, 자동인형과 기타 쇼윈도 장식용의 움직이는 전시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9.00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 유아용 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재질을 불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21 부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제 97 류)	
97	**제 97 류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9701	회화·데생과 파스텔(전적으로 육필한 것에 한하며, 제 4906 호의 데생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9701.10	회화·데생과 파스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7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702.00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703.00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704.00	우표 또는 수입인지·우편요금 별납증서·초일봉투·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사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 4907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705.00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 또는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706.00	골동품(제작후 100 년을 초과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3.20	포켓용 라이터(가스 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3.80	기타 라이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4.00	흡연용 파이프(파이프 볼을 포함한다)와 시가 또는 시가렛홀더 및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5	빗·헤어슬라이드와 이와 유사한 물품, 머리핀·컬링핀·컬링그립·헤어컬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 8516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9615.1	빗·헤어슬라이드와 이와 유사한 물품	
9615.11	경화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제 4 장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 4.1 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양 당사국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다.

나. 양 당사국의 관세 법, 규정 및 행정절차의 적용에 대하여 예측가능성, 일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한다.

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상품의 통관을 보장한다.

라.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한다. 그리고

마. 이 장의 적용범위 내에서, 관세행정기관 간 협력을 증진한다.

제 4.2 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관절차와 관행의 예측가능성, 일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한다.

2. 제19.1조(공표)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이 적용하거나 집행하는 모든 관세 법과 규정 및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인터넷 상에 공표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인 관세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문의처를 설치 또는 유지하고, 그러한 문의처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그러한 질의를 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정보는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제 4.3 조
서류와 자료요소의 조화

1. 각 당사국은 무역에 사용되는 서류와 자료요소들이 국제기준에 따라 조화를 추구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라 한다)의 관세데이터모델과 WCO의 관련 권고사항 및 지침에 따른 일련의 공통적인 자료요소와 처리절차 개발을 포함하여 국제기준을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3. 각 당사국은 수입자 및 수출자가 모든 필요한 데이터를 한 기관에 제출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통과와 관련된 각 기관의 데이터 요건을 조화시키고, 무역 데이터 제출을 최소화시키는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제 4.4 조
종이없는 무역 환경 내에서 자동화 시스템의 사용

1. 각 관세행정기관은 WCO 내 이 분야에서의 진전상황을 고려하여, 특히 종이없는 무역의 맥락에서, 비용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우 통관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적용한다.

2. 각 관세행정기관은 위험관리 및 선별을 위한 전자 또는 자동화 시스템뿐만 아니라, 상품 선적 도착 전 정보와 자료의 제출 및 처리를 포함하여, 그 상품의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4.5 조
위험관리

통관 절차를 운영함에 있어, 각 관세행정기관은 고위험 상품 선적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위험 상품의 반출을 포함한 통관을 촉진한다.

제 4.6 조
상품의 반출

1.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가. 자국의 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상품을 반출하도록 규정하는 절차

나. 도착 시에 상품을 반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 상품의 물리적 도착 전에 정보를 사전에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절차

다. 가능한 한도에서,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도착 지점에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 그리고

라. 수입 당사국의 법, 규정 또는 행정절차에 명시된 상황에서, 특정금액 이하의 가치를 가진 선적품에 대하여 관세 또는 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공식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아니할 것임을 규정하는 절차

3. 각 당사국은 긴급 통관을 요하는 상품이 공휴일을 포함하여 하루 24시간 통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채택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4.7 조
사전심사결정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나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5]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다음에 대하여 서면 사전심사결정서를 발급한다.

가. 품목분류

나. 관세평가협정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의 적용

다.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

2. 각 당사국은 서면 사전심사결정서를 발급하기 위한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는

가. 사전심사결정 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상세설명을 포함한다.

나.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사전심사결정 신청을 평가하는 과정 중에 언제라도, 상품의 견본과 같이 그 신청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을 신청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 사전심사결정이 신청인에 의하여 제공된 사실과 상황, 그리고 결정권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다른 관련 정보에 기초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라. 모든 필요한 정보를 받은 이후에 사전심사결정이 신속하게, 그리고 자국의 법, 규정 또는 행정절차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신청자에게 내려지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마.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사전심사결정의 이유에 대하여 서면 설명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3.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 및 상황이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사전심사결정을 거부하는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거부 판정에 대한 관련 사실과 근거를 적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

4.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서가 발급된 날 또는 사전심사결정에 명시된 다른 날부터 사전심사결정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다. 제1항과 제5항을 조건으로, 사전심사결정은 5년 이상 또는 발급 당사국의 법, 규정 또는 행정 결정에 명시된 다른 기간 동안 그 효력이 유지된다.

5. 발급 당사국은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다음의 경우 이 협정과 합치하게 사전심사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

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관련 정보를 주지 아니한 경우

다. 중요한 사실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또는

라.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6. 발급 당사국은, 신청자가 고의적으로 또는 부주의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정보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소급하여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7.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규정 및 행정절차에 따라 자국의 사전심사결정을 공표하도록 노력한다.

제 4.8 조
불복청구 절차

1.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대한 자국의 결정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가 다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가. 재심 중에 있는 결정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공무원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된 최소한 한 단계의 행정적 재심, 그리고

나. 최종단계의 행정적 재심에서 내려진 결정 또는 판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이 다음의 인에게,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내린 원산지 결정 및 사전심사결정에 대한 재심 및 불복청구에 대한 동일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부여한다.

가. 원산지 결정 대상이었던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거나 신청한 인, 또는

나. 제4.7조에 따라 사전심사결정을 받은 인

3. 각 당사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재심을 실시하는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그 당사국에게 그 정보를 자국의 법, 규정 및 규칙에 따라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입자 ·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을 통하여 사전심사결정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 4.9 조
관세협력

1. 양 당사국은 각각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관세 사안에 대한 그들의 협력을 증진한다.

2. 양 당사국은 상품의 합법적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하며,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위험관리를 포함한 통관 기술 및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전문기술을 교환한다.

3. 양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하여 협력한다.

   가.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특혜관세대우 신청절차 및 검증절차를 포함하여, 수입 또는 수출을 규율하는 이 협정의 규정의 이행 및 운영

   나.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협정의 이행과 운영

   다.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관세 사안

4.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통관절차의 운영을 규율하는 모든 발의된 법, 규정 또는 정책에 대한 사전 통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5. 각 당사국의 법, 규정 및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양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관세 법과 규정의 위반을 조사하고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서로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6. 양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정보의 교환을 위해 접촉선의 세부사항을 교환한다.

제 4.10 조
양자 관세협의

1. 각 관세행정기관은 다른 쪽 관세행정기관과 이 장의 운영 또는 이행에서 야기되는 모든 사안과 품목분류, 관세평가 및 원산지 결정을 포함하는 다른 무역원활화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사안에 대하여 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 즉시 응답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요청된 협의가 그러한 사안을 해결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검토를 위하여 원산지 규정 및 무역 원활화 위원회에 그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제 4.11 조
비밀유지

1. 제22.4조(정보의 공개) 및 제22.5조(비밀유지)에 더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 또는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을 위한 경우 또는 달리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 정보를 제공한 관세행정기관은 그러한 다른 사용에 대하여 지체없이 통보받는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 또는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따라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정보를 받은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같은 종류의 정보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3. 이 장 또는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에 해당하는 공개인 경우, 당사국이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자국의 법, 규정 및 규칙에 의하여 판정된 공익에 반하는 경우

   나. 개인의 사생활 또는 개인의 금융 거래 및 계정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자국의 모든 법, 규정 및 규칙에 반하는 경우, 또는

   다. 법 집행을 저해하는 경우

제 4.12 조
원산지 규정 및 무역 원활화 위원회

1. 제21.4조(위원회 및 작업반)에 따라 설치된 원산지 규정 및 무역 원활화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원산지 규정과 관세 사안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2. 위원회는 특히 이 장 또는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해석과 이행에 대한 공통의 접근방식을 고려함으로써, 이 장 또는 제3장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고려하고, 적절한 경우 해결한다.

3. 위원회는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합한다.

제 4.13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통관 절차란 각 관세행정기관이 통관관리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적용하는 취급을 말한다. 그리고

상품이란 이 협정의 범위와 관계없이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을 말한다.

제 5 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 1 절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 5.1 조
적용범위

1. 제3항과 제4항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절은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정부의 모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적용된다.

2. 각 당사국은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을 담당하는 자국 영역 내의 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비정부기관에 의한 이 절의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3. 정부기관이 그러한 기관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기술규격은 이 절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적용범위에 따라 제12장(정부조달)에서 다루어진다.

4. 이 절은 이 장 제2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5.2 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확인

제1.2조(다른 협정과의 관계)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제 5.3 조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

1.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4조 및 제5.4조에 따라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 또는 그 관련 부분을 자국의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 사용한다.

2. 한쪽 당사국이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 또는 그 관련 부분을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5조 및 제5.4조에 따라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3. 양 당사국은 각국의 표준기관이 이 절과 관련된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를 개발하는 관련 국제 또는 지역 기관에서 논의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장려한다.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와 제5조 및 부속서 3의 의미 내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가 2000년 11월 13일 채택한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G/TBT/9의 부속서 4)을 적용한다.

제 5.4 조
기술규정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이 자국의 기술규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들 규정이 자국의 규정의 목적을 적절히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2.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제 5.5 조
표시 및 라벨링

1. 이 조의 목적상, 그리고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제1항에 따라, 기술규정은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포함하거나 이를 전적으로 다룰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2조에 따라 상품에 대한 의무적인 표시 또는 라벨링을 포함한 기술규정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초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도록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목적상, 그러한 기술규정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아니하다.

3. 한쪽 당사국이 상품의 강제적 표시 또는 라벨링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당사국은 그 상품의 소비자 또는 사용자와 관련된 표시 또는 라벨링 외의 표시 또는 라벨링에 대해서는 요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재정상의 목적을 포함한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표시 또는 라벨링이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요건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아니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나. 당사국은, 경제 운영자에 대해서 고유한 확인번호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경제 운영자에게 과도한 지체 없이 그리고 비차별적으로 그러한 번호를 발행한다.

다. 당사국은 표시 또는 라벨 상의 정보가 특정 언어로 되어있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국제상품분류체계가 양 당사국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그러한 상품분류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 추가적 언어의 동시 사용은 다음이 만족되는 경우 금지되지 아니한다.

1) 추가적 언어로 제공된 정보가 특정 언어로 제공된 정보와 동일한 경우, 또는

2) 추가적 언어로 제공된 정보가 그 상품에 관하여 기만적 진술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라.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정당한 목적이 이에 의하여 손상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을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1) 비영구적 또는 탈착가능한 라벨, 또는

2) 상품에 부착된 표시 또는 라벨링 대신 동반 서류에 표시 또는 라벨링을 하는 것

제 5.6 조
적합성 평가절차

1.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다음은 그 예시이다.

가. 한쪽 당사국은 특정 기술규정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기로 다른 쪽 당사국과 합의할 수 있다.

나.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다.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라.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

마. 각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은 상대방의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는 자발적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바. 수입 당사국은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을 신뢰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국의 영역에서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메커니즘의 범주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한다.

3.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4.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인정을 위한 협정을 협상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기관이 실시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자국 영역 내에서의 인정 촉진에 관한 협상에 참여하기나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제 5.7 조
공동협력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각 당사국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양 당사국은 특정 사안이나 분야에 적절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무역촉진 양자 이니셔티브를 확인, 개발 및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다음과 같은 규제 사안에 관한 협력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표준 및 기술규정의 동등성

나. 우수 규제 관행

다. 투명성

라. 국제표준과의 정합

마. 공급자 적합성 선언에 대한 신뢰

바. 적합성 평가기관의 자격부여를 위한 인정의 활용, 그리고

사. 적합성 평가절차의 인정을 위한 메커니즘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이 절에 따른 협력 강화를 위하여 요청 당사국이 제시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제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제 5.8 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자국인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에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참여하도록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비정부기관이 표준과 자발적인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과 관련하여 제1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3. 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제안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알고 이해하며 그러한 규정 및 절차에 대하여 의미 있는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9조, 제3.2조, 제5.6조 또는 제7.2조에 따라 공고를 공표하거나 통보하는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안된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가 추구하는 목적과 그것이 그 목적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그리고

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그 제안을 통보할 때에 이와 동시에, 한국의 제안인 경우에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호주의 문의처, 또는 호주의 제안인 경우에는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 조정자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제안을 전달한다.

각 당사국은 나호에 따른 제안을 전달한 후, 대중과 다른 쪽 당사국이 그 제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 60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4. 각 당사국은, 최종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공표하는 날보다 늦지 아니한 때에, 제3항에 따라 대중 또는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중대한 의견에 대한 자국의 답변을, 인쇄하여 또는 전자적으로,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한다.

5.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10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통보할 때, 이와 동시에 한국의 제안인 경우에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호주 문의처, 또는 호주의 제안인 경우에는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 조정자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제안을 전달한다.

6.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겠다고 제안한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관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제 5.9 조
조정 메커니즘

1.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를 지명하고, 자국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는 이 절의 이행과 이 절에 관한 모든 사안에서 양 당사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절의 이행 및 운영의 점검

나.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채택, 적용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의 신속한 처리

다.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및 개선에 대한 협력 증진

라.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 영역의 정부 및 비정부 적합성 평가기관을 포함하여, 적합성 평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당사국이 제시하는 특정분야에 대한 모든 제안의 검토 원활화

마. 다른 쪽 당사국이 지정한 분야에서, 협정교섭을 위한 요청을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를 인정하도록 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대한 검토 원활화

바. 당사국의 정보 요청에 응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정보의 교환

사. 적절한 경우, 표준화,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는 비정부, 지역 및 다자 포럼에서의 진전사항에 대한 정보의 교환

아. 당사국의 질의를 적절한 규제당국에 회부함으로써 특정한 기술규정 영역에서의 협력 촉진

자.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절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협의, 그리고

차.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상의 모든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절을 검토하고, 그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절의 개정을 위한 권고를 개발

3.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는 자신의 기능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적절한 모든 합의된 방법으로 서로 연락한다.

4. 양 당사국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각 당사국 대표로 구성되는 임시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 모든 임시 작업반의 범위와 위임사항은 양 당사국이 결정한다. 양 당사국의 결정을 조건으로, 각 임시 작업반은,

가.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담당하는 정부대표를 포함할 수 있다.

나. 비정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를 포함하거나 그들과 협의할 수 있다. 그리고

다. 관련 국제 활동을 고려하여, 그 작업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5.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임시 작업반 설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6. 이 절의 목적상,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는 다음 기관이 맡는다.

가. 한국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호주의 경우, 산업부 또는 그 승계기관

제 5.10 조
정보교환

이 절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또는 설명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리고 가능한 경우 60일 이내에, 인쇄하여 또는 전자적으로 제공된다.

제 5.11 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절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 5.12 조
정의

이 절의 목적상,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및 **비정부기관**[6]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1에서 그러한 용어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 2 절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 5.13 조
적용범위

이 절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

제 5.14 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확인

제1.2조(다른 협정과의 관계)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제 5.15 조
접촉선

1. 각 당사국은 이 절의 운영과 관련하여 접촉선을 지정한다. 이 절의 목적상, 접촉선은 다음 기관이 맡는다.

가. 한국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서 인용한 "비정부기관"의 정의에서 "지방정부기관"은 제1.4조에서 정의된 대로의 지역정부를 포함한다.

나. 호주의 경우, 농림부 또는 그 승계기관

2. 접촉선은,

가. 이 절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원활히 한다.

나. 제5.16조에 언급되는 기술 협의회를 조율한다. 그리고

다. 이 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양 당사국 간의 그 밖의 모든 의사소통을 원활히 한다.

제 5.16 조
기술 협의회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와 날짜에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한 기술 협의회를 개최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하여 책임 있는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는 그 협의회에 참가한다.

2. 기술 협의회는 제5.15조에 언급된 접촉선에 의하여 조율된다.

3. 기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절의 이행의 검토 및 점검

나.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그러한 조치에 관련된 규제절차에 대한 상호 이해의 증진

다. 제5.17조제2항에 따른 협력활동의 관여

라.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에 대한 상호 관심 사안의 검토 추구, 그리고

마.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 기술협의회 논의 결과를 보고

제 5.17 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증진한다.

가. 식품안전과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사안에 관여하는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의견 교환을 포함한 협력

나. 각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의 시의적절한 교환 촉진, 그리고

다. 지식 및 경험의 공유

2. 양 당사국은 이 절의 규정과 합치되게 위생 및 식물위생에 대한 상호 관심 사안에 관하여 협력 및 협조를 확대하기 위한 기회를 양자, 지역 및 다자 수준에서 모색한다.

3. 한쪽 당사국이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나의 제5항나호 또는 제6항가호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통보가 세계무역기구에 제공됨과 동시에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통보의 사본을 제공한다.

제 5.18 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절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무역구제

제 1 절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6.1 조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에 규정된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나.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1)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는 시점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그리고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다. 계절적으로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경우, 각 계절별로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1)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일 직전에 상응하는 계절에 대하여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그리고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에 상응하는 계절에 대하여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제 6.2 조
조건 및 제한

1.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 3 조 및 제 4.2 조[7]에 규정된 절차와 요건에 따라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 3 조 및 제 4.2 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한쪽 당사국은 제 1 항에 기술된 조사를 개시할 때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조사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검토하고 그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이전에 실행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조기에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모든 그러한 조사를 개시일부터 1 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4. 어떠한 당사국도,

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

나.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의 총 기간이 최초 적용기간과 이에 대한 연장을 포함하여 3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적용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 조에 명시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 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2 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에,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도기간의 만료 이후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1 회를 초과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어떠한 긴급수입제한조치나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도 특정 상품에 대해 1994 년도 GATT 제 19 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있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정 상품에 대해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경우, 이 절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해 취해지고 있는 어떠한 기존의 긴급수입제한조치나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종료된다.

7.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존속기간이 1 년을 넘는 경우, 적용 당사국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8. 당사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하는 때, 관세율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부속서 2-가(관세 철폐)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제 6.3 조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

1.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7]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 4.2 조의 통합 목적상,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 4.2 조나호에 언급된 인과관계는 제 6.6 조에 정의된 "실질적 원인"을 말한다.

원인이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권한 있는 당국의 예비판정에 따라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2.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적용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하고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후 즉시 협의를 개시한다.

3. 모든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은 200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적용 당사국은 제 6.2 조제 1 항의 요건을 준수한다.

4. 적용 당사국은 제 6.2 조제 1 항에 따라 수행된 조사에서 제 6.1 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사결과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잠정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결과로 징수된 모든 추가 관세를 신속하게 반환한다.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제 6.2 조 제 4 항나호에 기술된 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 6.4 조
보상

1.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후 30 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긴급수입제한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부여한다. 적용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보상을 제공한다.

2. 양 당사국이 제 1 항에 따라 협의 개시 후 30 일 이내에 보상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의 당사국은 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3. 제 1 항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적용 당사국의 의무와 제 2 항에 따라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권리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하는 날에 소멸된다.

제 6.5 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각 당사국은 1994 년도 GATT 제 19 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및 「농업에 관한 협정」 상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 이 협정은, 1994 년도 GATT 제 19 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을 그 조치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1994 년도 GATT 제 19 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또는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 6.6 조
정의

제 1 절의 목적상,

「농업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국내 산업이란, 수입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총 산출량이 그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제 6.1 조에 기술된 조치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란 국내 산업의 입지에 대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

실질적 원인이란 다른 어떠한 개별 원인보다도 더 기여하는 주된 원인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특정 상품에 대한 **과도기간**이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부속서 2-가(관세 철폐)의 그 당사국의 관세양허표에 따른 관세 철폐일 또는 관세 감축 완료일 이후 5 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 2 절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6.7 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 제 2.3 조(관세 철폐)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부속서 6-가의 자국 양허표에 기재된 원산지 농산물에 대하여, 그 농산물의 어떠한 연도의 총 수입 물량이 부속서 6-가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2. 제 1 항에 따라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로 적용되는 관세는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

나.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다. 부속서 6-가의 적용 당사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

3. 어떠한 당사국도 이 조에 따라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그 조치를 적용한 연도 이후로는 그 조치를 유지하지 아니한다.

4. 부속서 6-가의 당사국 양허표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농산물에 대하여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이 조에 따라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면서 동시에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다음을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가. 이 협정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

나. 1994 년도 GATT 제 19 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상의 조치, 또는

다.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긴급수입제한조치

6. 당사국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이행한다.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조치를 적용한 후 60 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교역량을 포함하는 그 조치에 관한 적절한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요청이 있는 경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그러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의 조건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7.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운송 중인 상품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이 물량은 차기 연도에서의 제 1 항 규정의 발동 목적상 차기 연도 동안 해당 상품의 수입 물량으로 계산될 수 있다.

8. 이 조의 이행과 운영은 상품무역위원회에서 논의 및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 3 절
반덤핑 및 상계 조치

제 6.8 조
반덤핑 및 상계 조치

1. 각 당사국은 반덤핑 및 상계 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 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장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반덤핑 또는 상계 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에게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세계무역기구협정」 이행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 양 당사국은 반덤핑마진이 가중평균 가격비교 또는 개별거래 가격비교 또는 가중평균-개별거래 가격비교를 기초로 설정되는 경우, 양의 값이든 음의 값이든 모든 개별 마진을 평균 계산에 포함시키는 자국의 현재 관행을 확인하고, 이러한 관행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공유한다.[8] 그리고

나. 「반덤핑협정」 제 9.1 조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당사국은, 덤핑 마진보다 적은 관세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경우, 덤핑 마진보다 적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최소 부과' 원칙을 통상적으로 적용한다.

제 6.9 조
통보 및 협의

1.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신청을 접수한 후, 그리고 조사개시 절차 전에, 그 당사국은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제공하고, 조사개시 직후에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2. 상계 조치의 신청이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접수된 이후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조사개시 이전에,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이 그러한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상황을 명확히 하고 상호 합의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의 기회가 제공된다.

제 6.10 조
약속

1.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를 개시한 후,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약속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서면통보를 제공한다.

2. 반덤핑 조사에 있어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덤핑과 그러한 덤핑으로 야기된 피해에 관한 긍정적인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약속의 이용가능성에 대해 알리고,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가 요청한 약속에 대해 합리적인 고려를 제공한다.

3. 상계 관세 조사에 있어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보조금 지급과 그러한 보조금 지급으로 야기된 피해에 관한 긍정적인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및 가능한 한도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약속의 이용가능성에 대해 알리고, 다른 쪽 당사국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가 요청한 약속에 대해 합리적인 고려를 제공한다.

[8] 이는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규범협상에서 각 당사국이 취하는 입장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6-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한국 양허표

1. 이 부속서는 제 6.7 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원산지 상품,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발동수준, 그리고 그러한 각 상품에 대해 각 연도에 적용될 수 있는 최대 관세율을 규정한다.

가. 아래에 포함된 쇠고기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0201.10.0000, 0201.20.1000, 0201.20.9000, 0201.30.0000, 0202.10.0000, 0202.20.1000, 0202.20.9000 및 0202.3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 (메트릭톤)	154,584	157,676	160,829	164,046	167,327	170,673
긴급수입 제한조치 관세율(%)	40	40	40	40	40	30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 (메트릭톤)	174,087	177,569	181,120	184,742	188,437	192,206
긴급수입 제한조치 관세율(%)	30	30	30	30	24	24

이행년도	13	14	15	16
발동수준(메트릭톤)	196,050	199,971	203,970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4	24	24	0

나. 아래에 포함된 맥아(볶지 아니한 것) 및 맥주맥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1003.00.1000 및 1107.1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 (메트릭톤)	147,486	150,436	153,444	156,513	159,644	162,836
긴급수입 제한조치 관세율(%)						
1003.00.1000 (513%)	502	479	455	432	408	385
1107.10.0000 (269%)	263	258	252	246	240	216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 (메트릭톤)	166,093	169,415	172,803	176,259	179,785	183,380
긴급수입 제한조치 관세율(%)						
1003.00.1000 (513%)	361	338	315	291	268	244
1107.10.0000 (269%)	207	199	190	181	139	127

이행년도	13	14	15	16
발동수준(메트릭톤)	187,048	190,789	194,605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003.00.1000 (513%)	221	197	174	0
1107.10.0000 (269%)	115	103	91.5	0

다. 아래에 포함된 옥수수(기타)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1005.90.9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 (메트릭톤)	33,053	33,714	34,388	35,076	35,777	36,493
긴급수입 제한조치 관세율(%)	313	298	283	268	253	190

이행년도	7	8
발동수준(메트릭톤)	37,223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67	0

라. 아래에 포함된 설탕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1701.99.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 (메트릭톤)	946	965	984	1,004	1,024	1,044
긴급수입 제한조치 관세율(%)	35	35	35	35	35	35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 (메트릭톤)	1,065	1,087	1,108	1,131	1,153	1,176
긴급수입 제한조치 관세율(%)	35	35	35	35	35	35

이행년도	13	14	15	16	17	18	19
발동수준 (메트릭톤)	1,200	1,224	1,248	1,273	1,299	1,325	해당없음
긴급수입 제한조치 관세율(%)	35	35	35	35	35	35	0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떠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위에 규정된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이 0이 된 날 후에는 적용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

제 7 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 7.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한쪽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그러한 조치는 다음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포함한다.

가.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또는 배달

나. 서비스의 구매 또는 이용,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

다.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유통, 운송 또는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라. 다른 쪽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자국 영역 내 주재, 그리고

마.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채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담보의 제공

2. 제7.4조, 제7.7조 및 제7.8조는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도 적용된다.[9]

3.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제8.20조(정의)에 정의된 금융서비스. 다만, 금융서비스가 당사국 영역 내 제8.20조(정의)에 정의된 금융기관에 대한 적용대상투자가 아닌 적용대상투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제2항이 적용된다.

나. 정부조달

다.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또는

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인지에 관계없이 국내 및 국제 항공 운송 서비스를 포함하는 항공 서비스, 그리고 항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 다만, 다음은 제외한다.

1)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2)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3)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그리고

[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한 제7.4조, 제7.7조 및 제7.8조의 적용범위는, 적용가능한 모든 비합치 조치와 예외를 조건으로, 이 조에 명시된 적용범위로 제한된다.

4) 특수항공서비스

양 당사국은 GATS 항공 운송 서비스에 관한 부속서의 검토에 따른 다자 협상에 주목한다. 이러한 다자 협상의 종결 시, 양 당사국은 그러한 다자 협상의 결과를 포함할 수 있도록 이 협정을 적절하게 개정하는 것을 논의할 목적으로 검토를 수행한다.

4. 이 장은 당사국에게 자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 하거나 자국의 영역에서 영구적으로 고용된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접근 또는 고용에 대하여 그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5. 이 장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 아니하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하에 공급되지도 아니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 7.2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제 7.3 조
최혜국 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 7.4 조
시장접근

어떠한 당사국도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1)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

2)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10] 또는

4)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 또는

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제 7.5 조
현지주재

어떠한 당사국도,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7.6 조
비합치 조치

1.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모든 기존의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

2)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지역정부, 또는

3) 지방정부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7.2조, 제7.3조,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2.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는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10] 가호3목은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 7.7 조
국내 규제

1. 당사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법 및 규정에 따라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신청의 제출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의무는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승인 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그리고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개별 분야에 적절한 경우 다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가.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나.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할 것, 그리고

   다. 면허절차의 경우, 그러한 조치 자체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이 아닐 것

3. GATS 제6조제4항과 관련된 교섭의 결과(또는 양 당사국이 참여하는 그 밖의 다자포럼에서 수행된 유사한 교섭의 결과)가 발효하는 경우, 그 결과가 이 협정에 따라 양 당사국 간에 발효되도록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의 협의 후에 적절한 경우 이 조는 수정된다.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그러한 교섭에 대하여 조율한다.

4. 자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거래 시 이용하는 기업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기업 명칭의 사용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아니하도록 달리 보장한다.

제 7.8 조
규정의 개발 및 적용에서의 투명성

제19장(투명성)에 더하여,

   가. 각 당사국은 이 장의 대상과 관련한 자국의 규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그리고

   나. 당사국이 제19.1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의 대상과 관련하여 채택을 제안하는 규정에 대하여 사전공고와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제공한다.

제 7.9 조
인정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표준 또는 기준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제5항의 요건을 조건으로, 당사국은 특정 국가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조화를 통하여 또는 달리 달성될 수 있는 그러한 인정은 관련 국가와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한쪽 당사국이 비당사국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자율적으로 또는 협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제7.3조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에 대하여 그러한 인정을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자국이 체결한 모든 인정 협정 또는 약정에 관하여 적절한 설명을 포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자국 영역에서 관련 기관에 의하여 체결된 인정 약정에 대하여, 당사국은 그러한 기관이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4. 기존의 것인지 또는 미래의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관심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자국과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한쪽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나 증명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다른 쪽 당사국이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5. 당사국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자국의 표준이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 간의 차별 수단을 구성하거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6. 부속서 7-가는 그 부속서에 규정된 대로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 또는 증명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제 7.10 조
지불 및 송금[11]

1. 각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공급에 관한 모든 지불과 송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공급에 관한 그러한 지불과 송금이 지불 또는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 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한 자국 법 및 규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지불 또는 송금을 금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

[1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11-다(송금)는 이 조에 적용된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나.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다.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라. 형사범죄, 또는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제 7.11 조
혜택의 부인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있는 기업인 경우로서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나 이 장의 혜택이 그 기업에 부여되면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면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기업인 경우, 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아는 경우, 혜택부인 당사국은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를 가능한 한도에서 통보한다.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 7.12 조
시청각 공동제작

영화, 애니메이션 및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한 시청각 공동제작이 시청각 산업의 발전과 양 당사국 간 문화적 및 경제적 교류 강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양 당사국은 부속서 7-나에 합의한다.

제 7.13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란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항공기 자체 또는 항공기의 부분에 대하여 행해지는 그러한 활동을 말하며, 소위 "비행전 운항정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란 항공사의 운항 일정, 가용성, 요금 및 요금 규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산화체제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국경 간 서비스공급**이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의 서비스 공급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서비스 공급,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한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서비스 공급

그러나 이는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업이란 제1.4조(정의)에 정의된 기업과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조직되거나 구성된 기업과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그 곳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지점을 말한다.

전문직 서비스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고등교육이나 동등한 수준의 훈련 또는 경력 또는 시험이 요구되고,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제한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이는 숙련기능인 또는 선박 및 항공기 승무원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이란 시장 조사, 광고 및 유통과 같은 마케팅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관련 항공사가 자신의 항공 운송 서비스를 자유로이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말하나, 항공 운송 서비스의 가격 책정이나 적용가능 조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12] 그리고

특수항공서비스란 항공화재진압, 관광, 살포, 조사, 지도제작, 사진촬영, 낙하산 투하, 글라이더 견인, 그리고 벌채 및 건설을 위한 헬기 운반과 같은 비운송 항공서비스, 그리고 그 밖의 공중에서의 농업, 산업 및 조사 서비스를 말한다.

[12] 제7.2조 및 제7.3조의 목적상, "서비스 공급자"는 GATS 제2조 및 제17조에서 사용된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부속서 7-가
전문직 서비스

1.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 및 증명을 위한 표준 및 기준에 관하여 협의할 적절한 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그러한 표준 및 기준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한 표준 및 기준은 교육, 시험, 경력, 행동 및 윤리, 전문성 개발 및 재증명, 종사 범위, 현지 지식,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관한 요건을 포함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관련 기관이 면허 및 증명에 관하여 상호 수용 가능한 표준 및 기준을 개발하고, 상호인정에 관한 권고를 공동위원회에 제공하며, 아래에 나열된 전문직 서비스 분야 또는 하위 분야 및 양 당사국에 의하여 상호 합의될 수 있는 그 밖의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임시면허 약정을 위한 절차를 개발하도록 독려한다.

가. 엔지니어링 서비스

나. 건축 서비스

다. 수의 서비스

라. 약사 및 방사선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건의료 서비스, 그리고

마. 회계 서비스

3. 양 당사국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을 설치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작업반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년 이내에 회합한다.

4. 작업반은 전문직 서비스 일반에 대하여, 그리고 적절한 경우 개별 전문직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사안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가. 양 당사국의 관련 전문직 기관 간의 상호인정약정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

나. 전문직 서비스공급자의 면허 및 증명을 위한 표준 절차 개발의 타당성

다. 상호인정약정의 개발을 방해하거나 당사국의 서비스공급자가 그러한 약정의 혜택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중앙 또는 지역 정부에서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

라. 전문직 서비스의 공급에 관련된 그 밖의 상호관심사

5. 작업반은 적절한 경우 전문직 서비스에 관한 관련 양자간, 복수간 및 다자간 협정을 고려한다.

6. 작업반은, 표준 및 기준의 상호인정과 임시면허를 촉진하는 이니셔티브의 권고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작업반의 진전사항과 작업의 향후 방향에 관한 것을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년 이내에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7. 제2항 및 제6항에 언급된 권고가 접수되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그 권고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권고를 검토한다. 공동위원회의 검토에 근거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적절한 경우 상호 합의한 기한 내에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독려한다.

8. 공동위원회는 이 부속서의 이행을 매 2년마다 최소 1회 검토한다.

부속서 7-나
시청각 공동제작물

제 1 조
권한 있는 당국

1. 각 당사국은 이 부속서를 이행할 목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을 지정한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함으로써 자국의 지정된 권한 있는 당국을 변경할 수 있다. 권한 있는 당국의 변경은 그 통보가 접수된 날부터 28일 후에 발효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이 부속서의 이행을 검토할 수 있으며, 그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제 2 조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승인

1. 각 당사국의 관련 국내 규제 또는 정책 체계를 조건으로, 시청각 공동제작물 제작 착수 이전에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잠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동제작자 또는 공동제작자들은 권한 있는 당국이 잠정 승인 과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권한 있는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2. 시청각물을 시청각 공동제작물로 잠정 승인함에 있어, 각 권한 있는 당국은 이 부속서의 일반적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된 승인 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3. 제작 완료 시, 공동제작자는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권한 있는 당국에 완성된 시청각물 및 권한 있는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4. 이 부속서에 따라 시청각물에 잠정 또는 최종 승인을 부여함에 있어, 권한 있는 당국은 협의를 통하여 이 부속서의 규정을 적용하며, 시청각 공동제작물 부속서 이행에 관한 양해각서에 수립된 약정을 인정한다.

5. 양쪽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승인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시청각물은 이 부속서의 목적상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6. 시청각물은, 권한 있는 당국이 공동제작자에게 승인이 부여되었다는 서면 통보를 제공하고 그 승인이 부여된 조건을 명시하면, 적용가능한 경우, 잠정 또는 최종 승인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될 것이다.

7.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시청각 공동제작물로서의 시청각물 승인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관련 당국이 시청각 공동제작 결과물의 공개 상영을 허용하도록 구속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공동제작자의 지위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한국의 공동제작자가 유일한 제작자인 경우, 그 공동제작자가 그 제작물이 한국 법에 따른 한국 시청각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충족할 것이 요구되는 지위와 관련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

나. 호주의 공동제작자가 유일한 제작자인 경우, 그 공동제작자가 그 제작물이 호주 법에 따른 호주 시청각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충족할 것이 요구되는 지위와 관련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 그리고

다. 공동제작자 간 공동 경영, 소유 또는 지배 관계가 없을 것. 다만, 시청각 공동제작물 자체 작업에 내재한 한도에서는 예외로 한다.

제 4 조
제3국 공동제작

1. 어느 한쪽 당사국이 제3국과의 시청각 공동제작물 협정, 또는 조약보다 낮은 지위를 가진 약정을 유지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제3국의 공동제작자와 공동으로 제작될 시청각물을 이 부속서에 따른 시청각 공동제작물로 공동 승인할 수 있다.

2. 제3국 공동제작자의 재정 및 창의적 기여도는 모두, 각 당사국의 관련 국내 규제 또는 정책 체계에 따라 요구되는 비율 이상을 차지한다.

3. 모든 제3국 공동제작자는 그 공동제작자의 국가와 어느 한쪽 당사국 간에 시행 중인 공동제작 협정, 또는 조약보다 낮은 지위를 가진 약정의 조건에 따라 시청각물의 제작을 위하여 충족할 것이 요구되는 지위와 관련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

제 5 조
혜택의 부여

1. 시청각 공동제작물은 다음의 혜택을 부여 받는다.

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내 시청각물에 부여되는 모든 혜택의 완전한 향유, 그리고

나. 어느 한쪽 당사국의 그 당시 발효 중인 법을 조건으로, 그 당사국의 국내 시청각물에 부여될 수 있는 모든 혜택

2. 시청각 공동제작물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될 수 있는 모든 보조금, 조세 혜택 또는 그 밖의 재정적 혜택은, 그 당사국의 기존의 조치에 따라 그러한 혜택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된 공동제작자에게 부여된다.

3. 그러한 보조금, 조세 혜택 또는 그 밖의 재정적 혜택은, 그 당사국의 기업 또는 국민의 혜택을 위하여 또는 이 부속서의 제4조(제3국 공동제작)에 따른 제3국 공동제작의 경우 그 조에 언급된 시청각 협정 또는 조약보다 낮은 지위를 가진 약정의 관련 적용범위 내에 해당하는 모든 개인 또는 기업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여되거나 배분되지 아니한다.

4. 이 부속서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에 따라 제작되었으나 이 부속서의 종료 이후 완성된 시청각물은 시청각 공동제작물로 취급되며, 이에 따라 그 공동제작자는 이 부속서의 모든 혜택을 부여받는다.

제 6 조
장비 수입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련 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시청각 공동제작물 제작을 위한 영화 및 기술 장비의 일시적 반입을 수입관세 및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허용한다. 그 장비는 관련 당사국의 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수입자에 의하여 관세 및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반출될 수 있다.

제 7 조
출입국 원활화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그리고 이 부속서 제4조(제3국 공동제작)에 따른 제3국 공동제작의 경우에는 그 조에 언급된 시청각 협정 또는 조약보다 낮은 지위를 가진 약정의 관련 적용범위 내에 해당되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시청각 공동제작물을 제작하기나 이용할 목적으로 자국 영역으로 이동, 입국 및 체류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는 그러한 개인이 그 영역으로의 입국 및 그 영역에서의 일시 체류와 관련되는 법, 규정 및 절차에 따른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한다.

제 8 조
기여도

1. 각 공동제작자는 방송용으로 의도된 애니메이션 제작물을 제외한 시청각 공동제작물을 위하여 총 재정적 기여의 20퍼센트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한다. 방송용 애니메이션 제작물에 대하여, 이 기여는 각 당사국의 관련 국내 규제 또는 정책 체계에 따라 요구되는 비율 이상이 된다.

2.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각 공동제작자의 연기, 기술 및 기능적 참여 비율("창의적" 기여도)은 각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기여에 합리적으로 비례한다.

제 9 조
현지 촬영

권한 있는 당국은 참여 중인 공동제작자의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의 현지 촬영을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제 10 조
참여

1. 이 부속서 제10.2조부터 제10.5조까지의 규정을 조건으로,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제작에 참여하는 개인은 공동제작자이다.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국가 이외의 국가의 시민 또는 영주권자인 연기자는 다음의 경우 시청각 공동제작에 참여할 수 있다.

   가. 권한 있는 당국이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는 경우

   나.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대본 또는 재정이 그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다.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의 승인된 현지 촬영 시, 합리적으로 필요한 단역인 경우

3. 권한 있는 당국이 제9조에 따라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의 현지 촬영을 승인한 경우, 그 국가의 시민 또는 영주권자는 군중 예술가로서, 또는 현지 촬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될 수 있다.

4. 권한 있는 당국이 시청각 공동제작물이 제작되는 시점에 공동제작자들의 국가에서 관련 전문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국가 이외의 국가의 시민 또는 영주권자인 제한된 수의 기술 인력의 참여를 승인할 수 있다.

5. 권한 있는 당국이 달리 승인하지 아니하는 한,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제작에 참여하는 시나리오 작가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다.

제 11 조
촬영장면

권한 있는 당국이 이 규칙과 달리 승인한 것을 조건으로,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포함된 촬영장면의 최소 90퍼센트는 그 시청각물을 위하여 특별히 촬영되거나 달리 창작된다.

제 12 조
최초 상영본의 제작

권한 있는 당국은 시청각 공동제작물이 양 당사국 영역에서, 또는 제3국 공동제작자가 있는 경우 그 공동제작자의 국가에서, 최초 상영본 또는 이에 상응하는 디지털 상영본이 만들어지기까지 제작되고 진행되도록 보장한다.

제 13 조
감사말 및 크레딧

권한 있는 당국은 각 시청각 공동제작물이, 시청각물이 "한국-호주 공동제작물" 또는 "호주-한국 공동제작물" 임을 명시하는 별도의 크레딧 타이틀을 포함하거나, 관련된 경우, 양 당사국과 제3국 공동제작자의 국가의 참여를 반영하는 크레딧을 포함하도록 보장한다.

제 14 조
과세

제6조 이외의 이 부속서의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의 목적상 양 당사국 간 모든 조세 조약 규정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에서 시행 중인 법이 적용된다.

제 15 조
균형

1. 부속서의 최우선 목표는, 권한 있는 당국의 감독에 의하면, 다음과 관련하여 양 당사국 간 전반적인 균형이 달성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가. 모든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제작비용에의 기여

나. 스튜디오와 현상실의 이용

다. 정확한 인원수로 계산된, 모든 연기, 기능 및 기술 인력의 고용, 그리고

라. 이 부속서의 발효일부터 매 3년마다의, 주요 연기, 기능 및 기술 부문 각각의 참여도, 그리고 특히 작가, 감독 및 주연 배우의 주요 연기, 기능 및 기술 부문 각각의 참여도

2. 어느 한쪽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1항에서 언급된 전반적인 균형이라는 최우선 목표가 시청각물의 시청각 공동제작물 승인으로 저해될 것이라는 근거하에, 그러한 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

제 16 조
제도적 장치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요청을 전달함으로써 이 부속서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요청을 적절히 고려한다. 임시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적절한 부처와 기관의 적절한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임시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안을 논의한다.

제 17 조
분쟁해결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요청을 전달함으로써 이 부속서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협의 요청서를 전달한 후 신속하게 개시된다. 양 당사국은 사안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시도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협의가 협의 요청서 접수일 후 60일 이내에 사안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주선, 조정, 중개 또는 비구속적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임시 위원회는 그 사안의 해결을 위한 절차를 결정한다.

3. 한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장(분쟁해결)은 이 부속서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 또는 분쟁에 대하여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8 조
이행 약정

1. 양 당사국은 시청각 공동제작물 부속서 이행에 관한 양해각서("양해각서")를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그 양해각서에 따라 수립된 책임과 합의가 이 부속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용될 것임을 인정한다.

제 19 조
검토

1. 양 당사국은 시청각 분야의 가변적 성격, 특히 기술의 역할을 인정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이 부속서의 운영을 검토하고,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제안을 한다.

제 20 조
부속서의 적용범위 및 해석

1. 이 부속서와 협정의 그 밖의 모든 규정 간의 불합치의 한도에서, 이 부속서가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우선한다.

2.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정의 그 밖의 모든 규정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지 아니한다. 협정의 다른 어떠한 규정도 이 부속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지 아니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제1장(최초규정 및 정의)의 제2절, 제7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제7.2조, 제7.3조, 제7.4조 및 제7.13조, 제10장(자연인

의 이동), 제11장(투자), 제19장(투명성), 제20장(분쟁해결), 제21장(제도 규정) 및 제22장(일반적 규정과 예외)의 어떠한 규정도 이 부속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1 조
존속 및 종료

1. 이 협정의 제23.4조(종료)의 어떠한 규정도 이 부속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부속서는 최초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3년까지의 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어느 한쪽 당사국은 그 기간의 만료 180일 이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종료에 대한 서면통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부속서를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부속서는 3년 만료 시 종료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이 부속서를 제2항에 따라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매 3년의 후속기간 동안 자동으로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어느 한쪽 당사국이 어느 3년의 기간의 만료 최소 180일 전에 종료에 대한 서면통보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기간의 만료 시 종료된다.

4. 이 부속서는 분리가능하며, 부속서의 종료는 협정의 계속되는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부속서의 종료는 이 조에 의해서만 규율된다.

제 22 조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시청각 공동제작물이란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및 디지털 형식의 제작물을 포함한, 한쪽 당사국의 한 명 이상의 공동제작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한 명 이상의 공동제작자(또는 제3국 공동제작의 경우에는 제3국의 공동제작자)와의 협력으로 만들고, 협의하에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시청각물을 말한다.

시청각물이란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 매체물에 구현된 영상의 집합, 또는 영상 및 음성의 집합을 말한다.

혜택이란 이 부속서 제5.1조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시청각 공동제작에 제공될 수 있는 모든 재정적 및 그 밖의 혜택을 말한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각 당사국에 의하여 권한 있는 것으로 지정된 당국 또는 당국들을 말한다.

공동제작자란 시청각 공동제작물을 만드는 데 관여하거나 관여하고자 하는 당사국의 하나 이상의 국민 또는 기업, 또는 이 부속서 제4조에 따른 제3국 공동제작의 경우에는 그 조에 언급된 시청각 협정 또는 조약보다 낮은 지위를 가진 약정의 관련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모든 개인을 말한다.

일이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기업이란 회사, 신탁, 파트너쉽, 단독소유기업, 합작투자,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기존의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조치란 모든 법, 규정, 절차, 요건 또는 관행을 포함한다.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국적법」상 의미에서 한국의 국민, 그리고

나. 호주의 경우, 2007년 「호주시민법」에 정의된 호주시민인 자연인 또는 1994년 이민규정에 따라 정의된 영주권자

보호물 및 재제작물이란 시청각물의 최종 결과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래 시청각물에서 얻어진 매체물, 그리고 시청각물의 배포와 상영 목적으로 시청각물의 복사본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된 매체물을 말한다.

2014년 4월 8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한민국 서울

윤상직 장관 귀하,

금일자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협정")의 서명과 관련하여 본인은 이 협정의 제7장(국경 간 서비스무역)과 제11장(투자)에 관한 교섭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호주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자원재활용과 저공해 자동차 배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한 일정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가. 제품과 포장재를 재활용하는 의무

나. 재활용 이행계획과 그 결과의 제출

다. 적용가능한 재활용 부과금의 납부

라. 일정 비율의 저공해 자동차 배급 의무, 그리고

마. 저공해 자동차를 배급할 계획의 제출 및 승인

에 관한 이러한 조치가 제11.9조(이행 요건)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기업이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영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협정의 목적상, 그러한 제한이 제7.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특정 지리적 지역 내에서 교육기관의 설립, 증설 또는 이전에 적용가능한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11998호, 2013.8.6)의 기존의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제7.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이 한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정부나 외국 공인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 고등교육기관에 한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가 제7.2조(내국민 대우) 및 제11.3조(내국민 대우)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주세법」(법률 제11873호, 2013.6.7) 및 그 하위 규정에 따라 주류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의 종류와 양에 대한 요건을 정할 수 있는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는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경우 제11.9조(이행 요건)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철도운송 회사가 회사 폐쇄 또는 청산을 포함하여 서비스 공급을 중단할 능력을 통제하는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제7.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용도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에 대한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용도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에 관한 조치는 제7.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앤드류 롭

2014년 4월 8일

앤드류 롭
통상투자부 장관
국회의사당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캔버라 2600

앤드류 롭 장관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금일자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협정")의 서명과 관련하여 본인은 이 협정의 제7장(국경 간 서비스무역)과 제11장(투자)에 관한 교섭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호주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자원재활용과 저공해 자동차 배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한 일정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가. 제품과 포장재를 재활용하는 의무

나. 재활용 이행계획과 그 결과의 제출

다. 적용가능한 재활용 부과금의 납부

라. 일정 비율의 저공해 자동차 배급 의무, 그리고

마. 저공해 자동차를 배급할 계획의 제출 및 승인

에 관한 이러한 조치가 제11.9조(이행 요건)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기업이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영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협정의 목적상, 그러한 제한이 제7.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특정 지리적 지역 내에서 교육기관의 설립, 증설 또는 이전에 적용가능한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11998호, 2013.8.6)의 기존의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제7.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이 한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정부나 외국 공인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 고등교육기관에 한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가 제7.2조(내국민 대우) 및 제11.3조(내국민 대우)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주세법」(법률 제11873호, 2013.6.7) 및 그 하위 규정에 따라 주류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의 종류와 양에 대한 요건을 정할 수 있는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는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경우 제11.9조(이행요건)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철도운송 회사가 회사 폐쇄 또는 청산을 포함하여 서비스 공급을 중단할 능력을 통제하는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제7.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용도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에 대한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용도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에 관한 조치는 제7.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윤 상 직

2014 년 4 월 8 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한민국 서울

윤상직 장관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금일자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협정")의 서명과 관련하여 본인은 이 협정의 제 7 장(국경 간 서비스무역)과 제 11 장(투자)에 관한 교섭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호주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 7.1 조(적용범위) 또는 제 11.1 조(적용범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 도박 및 베팅 서비스[1]의 국경 간 무역은 제 7 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도박 및 베팅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제 11 장(투자)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앤드류 롭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박 및 베팅 서비스"는 전자적 전송을 통하여 공급되는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사행성게임물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한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정의된 대로, "사행성게임물"은 특히 베팅을 통하거나 우연에 의하여 금전적 손실 또는 이득을 초래하는 게임기기를 포함한다.

2014 년 4 월 8 일

앤드류 롭
통상투자부 장관
국회의사당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캔버라 2600

앤드류 롭 장관 귀하,

금일자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협정")의 서명과 관련하여 본인은 이 협정의 제 7 장(국경 간 서비스무역)과 제 11 장(투자)에 관한 교섭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호주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 7.1 조(적용범위) 또는 제 11.1 조(적용범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 도박 및 베팅 서비스[1]의 국경 간 무역은 제 7 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도박 및 베팅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제 11 장(투자)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윤 상 직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박 및 베팅 서비스"는 전자적 전송을 통하여 공급되는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사행성게임물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한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정의된 대로, "사행성게임물"은 특히 베팅을 통하거나 우연에 의하여 금전적 손실 또는 이득을 초래하는 게임기기를 포함한다.

2014 년 4 월 8 일

앤드류 롭
통상투자부 장관
국회의사당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캔버라 2600

앤드류 롭 장관 귀하,

금일자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협정")의 서명과 관련하여 본인은 각 당사국의 부속서 I 의 통신서비스 유보항목에 관한 교섭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호주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 당사국의 인에게 공중통신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허가의 부여에 대해,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이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
> 가.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거를 둔다.
>
>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지분을 보유하는 한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허가의 부여가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에 유리한 추정을 사용한다. 그리고
>
> 다. 제 9.21 조(투명성)와 합치하는 규범제정을 통하여 그러한 절차를 개발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윤 상 직

2014 년 4 월 8 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한민국 서울

윤상직 장관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금일자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협정")의 서명과 관련하여 본인은 각 당사국의 부속서 I 의 통신서비스 유보항목에 관한 교섭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호주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 당사국의 인에게 공중통신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허가의 부여에 대해,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이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 >
> > 가.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거를 둔다.
> >
> >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지분을 보유하는 한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허가의 부여가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에 유리한 추정을 사용한다. 그리고
> >
> > 다. 제 9.21 조(투명성)와 합치하는 규범제정을 통하여 그러한 절차를 개발한다.
>
>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앤드류 롭

제 8 장
금융서비스

제 8.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나.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 그리고

   다.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2. 제 7 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제 11 장(투자)은 그 장들 또는 그 장들의 조항들이 이 장에 통합되는 한도에서만 제 1 항에 기술된 조치에 적용된다.

   가. 제7.11조(혜택의 부인), 제11.7조(수용 및 보상), 제11.8조(송금), 제11.11조(혜택의 부인) 및 제11.13조(특별형식 및 정보요건)는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나. 제11장(투자)의 제2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은 이 장에 통합된 제11.7조(수용 및 보상), 제11.8조(송금), 제11.11조(혜택의 부인) 또는 제11.13조(특별형식 및 정보요건)를 당사국이 위반하였다는 청구에 대하여만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그리고

   다. 제 7.10 조(지불 및 송금)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이 제 8.5 조에 따른 의무의 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3.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또는

   나. 자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의 계좌로, 또는 당사국의 보증 하에, 또는 당사국의 금융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다만, 당사국이 자국의 금융기관에 가호 또는 나호에 언급된 모든 활동 또는 모든 서비스를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한도에서는 이 장이 적용된다.

4. 이 장은 상업적 재판매를 위한 경우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정부 기관의 금융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법, 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8.2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의 설립 · 인수 · 확장 · 경영 · 영업 ·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금융기관 및 투자의 설립 · 인수 · 확장 · 경영 · 영업 ·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한다.

3. 제 8.5 조제 1 항의 내국민 대우 의무의 목적상, 한쪽 당사국은 관련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 8.3 조
최혜국 대우[13]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와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 8.4 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그러한 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1)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수

      2)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금융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금융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금융서비스의 총 산출량,[14] 또는

[1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 언급된 대우는 제 11 장(투자)의 제 2 절에 포함된 것과 같은 국제 분쟁해결 절차 또는 메커니즘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금융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금융기관이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 또는

나.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제 8.5 조
국경 간 무역

1. 각 당사국은,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부속서 8-가에 명시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소재한 인, 그리고 소재지와 관계없이 자국 국민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금융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의무는 당사국이 그러한 공급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서 영업 또는 구매권유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각 당사국은 이 의무의 목적상 "영업" 및 "구매권유"를 정의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정의는 제 1 항과 불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한쪽 당사국은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에 대하여 등록 또는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 8.6 조
신금융서비스[15]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의한 추가적인 입법행위 없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 8.4 조나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신금융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및 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이 금융기관에게 신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인가를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그 인가는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14] 가호 3 목은 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15]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어떠한 당사국의 영역에서도 공급되지 아니하는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인가를 다른 쪽 당사국에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 당사국은 양해한다. 그러한 신청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당사국의 법과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의무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 8.7 조
일정 정보의 취급

제 22.4 조(정보의 공개)에 더하여,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개인 고객의 금융 거래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제 8.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1.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특정 국적자를 고위 경영자 또는 그 밖의 핵심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의 이사회 총원의 절반 이상이 당사국의 국민, 당사국 영역에 거주하는 인, 또는 양자의 결합으로 구성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8.9 조
비합치 조치

1. 제 8.2 조부터 제 8.5 조까지와 제 8.8 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모든 기존의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II 의 자국 유보목록 제 1 절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

2) 부속서 III 의 자국 유보목록 제 1 절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지역정부, 또는

3) 지방정부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아래 시점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1) 제 8.2 조, 제 8.3 조, 제 8.4 조 또는 제 8.8 조에 대해서는, 그 개정 직전, 또는

2) 제 8.5 조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발효일

2. 제 8.2 조부터 제 8.5 조까지와 제 8.8 조는 부속서 III 의 자국 유보목록 제 2 절에 그 당사국이 규정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그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 7.2 조(내국민 대우), 제 7.3 조(최혜국 대우), 제 11.3 조(내국민 대우), 제 11.4 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 11.10 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속서 I 또는 II 의 당사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비합치 조치는, 유보항목에 규정된 그 조치,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각 경우에 맞게, 제 8.2 조, 제 8.3 조, 제 8.5 조제 1 항 또는 제 8.8 조제 2 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비합치 조치로 취급된다.

제 8.10 조
예외

1. 이 장의 다른 규정 또는 특히 제 9.2 조(다른 장과의 관계)를 포함한 제 9 장(통신), 제 11 장(투자) 또는 제 15 장(전자상거래),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한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 7.1 조제 3 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은, 투자자 · 예금자 ·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기관이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또는 금융제도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16]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가 이 항에서 언급된 이 협정상의 규정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그러한 규정상의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장 또는 특히 제 9.2 조(다른 장과의 관계)를 포함한 제 9 장(통신), 제 11 장(투자) 또는 제 15 장(전자상거래),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 7.1 조제 3 항의 어떠한 규정도, 통화 및 관련 신용정책 또는 환율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취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차별적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항은 제 11 장(투자)이 적용되는 조치에 대한 제 11.9 조(이행요건)상의 당사국의 의무, 또는 제 7.10 조(지불 및 송금)나 제 11.8 조(송금)상의 당사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장에 통합된 제 7.10 조(지불 및 송금) 및 제 11.8 조(송금)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무결성 또는 금융적 책임의 유지에 관한 조치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의 적용을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 기관 또는 공급자의 계열사 또는 그 기관 또는 공급자와 관련된 인에게, 또는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송금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항은 당사국이 송금을 제한하도록 허용하는 이 협정의 어떠한 다른 규정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기만적이고 사기적인 관행의 방지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이 장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거나 금융서비스 계약 불이행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동종의 여건하에 있는 국가 간에 그러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나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요건에 따라야 한다.

[16] "건전성 사유" 란 개별 금융기관이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 건전성 · 무결성 또는 금융 책임의 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 8.11 조
투명성

1. 양 당사국은 금융기관과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제 및 정책이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국 시장에서의 영업을 촉진함에 있어 중요함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서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장이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3. 제 19.1 조제 2 항을 대신하여,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다음을 한다.

   가. 자국이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이 장의 대상에 관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과 그 규정의 목적을 사전에 공표한다.

   나. 그러한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다. 자국이 최종 규정을 채택하는 시점에 그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접수된 실질적 의견을 서면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4.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시간을 둔다.

5.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자율규제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이해관계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설치하거나 유지한다.

7. 각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요건을 공개한다.

8.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그 신청의 처리상황을 신청자에게 알린다. 당국이 신청자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당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9.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한 완료된 신청에 대하여 120 일 이내에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신청은 모든 관련 심리가 개최되고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접수되기까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2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규제당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그 이후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10. 신청이 거부된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거부한 규제당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신청거부이유를 신청자에게 알린다.

제 8.12 조
자율규제기구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율규제기구의 회원이 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접근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자율규제기구가 제 8.2 조 및 제 8.3 조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제 8.13 조
지급 및 청산 제도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급 및 청산 제도와 일상적인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용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조는 당사국의 최종 대부기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제 8.14 조
인정

1.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의 적용에 있어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인정은

   가.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나. 조화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또는

   다. 비당사국과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할 수 있다.

2. 제 1 항에 따라 건전성 조치의 인정을 부여하는 당사국은 동등한 규제, 감독, 규제의 이행, 그리고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 간의 정보 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3. 한쪽 당사국이 제 1 항다호에 따라 건전성 조치의 인정을 부여하고 제 2 항에 기술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 8.15 조
구체적 약속

부속서 8-나는 각 당사국에 의한 일정한 구체적 약속을 규정한다.

제 8.16 조
금융서비스 위원회

1. 제 21.4 조(위원회 및 작업반)에 따라 설치된 금융서비스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담당 당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그리고

   나. 호주의 경우, 재무부 및 외교통상부

2. 위원회는

   가. 이 장의 이행 및 그 구체화를 감독한다.

   나. 양 당사국이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당사국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금융서비스 관련 사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다. 제 8.19 조에 따라 투자분쟁에 참여한다.

3. 위원회는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이 협정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또는 달리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제 8.17 조
협의

1. 한쪽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양 당사국은 위원회에 협의결과를 보고한다.

2. 이 조에 따른 협의에는 제 8.16 조제 1 항에 규정된 당국의 공무원이 포함된다.

제 8.18 조
분쟁해결

1. 제 20 장(분쟁해결)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이 조에 의하여 수정되어 적용된다.

2.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다음을 제외하고는, 제 20.8 조(패널의 설치)가 적용된다.

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패널은 전원 제 3 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나. 그 밖의 경우

1) 각 당사국은 제 3 항 또는 제 20.8 조제 5 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패널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2) 피소 당사국이 제 8.10 조를 원용하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의장은 제 3 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3. 금융서비스 패널위원은

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포함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법이나 관행에 관한 전문성 또는 경력을 가진다. 그리고

나. 제 20.8 조제 5 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4. 제 20.14 조(불이행)에도 불구하고, 패널이 어떤 조치가 이 협정과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쟁 중인 그 조치가

가. 금융서비스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만 혜택을 중지할 수 있다.

나. 금융서비스 분야 및 그 밖의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자국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조치의 효과에 상당하는 효과를 미치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혜택을 중지할 수 있다. 또는

다. 금융서비스 분야 이외의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혜택을 중지할 수 없다.

제 8.19 조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

1.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 11 장(투자)의 제 2 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에 따라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고 피청구국이 항변으로 제 8.10 조를 원용하는 경우,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가. 제 11 장(투자)의 제 2 절에 따라 중재 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120 일 이내에 피청구국은 제 8.10 조가 청구에 대한 유효한 항변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어느 한도에서 인정되는지의 문제에 관한 공동 결정 요청서를 서면으로 금융서비스 위원회에 제출한다. 피청구국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그 중재판정부에 그러한 요청서의 사본을 제공한다. 중재는 그 청구에 대하여 라호에 규정된 대로만 진행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가호에 기술된 대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선의로 노력한다. 모든 그러한 결정은 분쟁 당사자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경우 그 중재판정부에 신속하게 전달된다. 그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다. 위원회가 가호에 따른 결정에 대한 피청구국의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0 일 이내에 그 호에 기술된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위원회가 미해결로 남겨둔 문제를 결정한다. 이 호에 의하여 수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 11 장(투자) 제 2 절의 규정이 적용된다.

1) 아직 중재판정부에 임명되지 아니한 모든 중재인의 임명에 있어, 각 분쟁 당사자는 그 중재판정부가 제 8.19 조제 3 항가호에 기술된 전문성 또는 경력을 가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특정 후보자의 전문성 또는 경력은 의장 중재인의 임명에 있어서 가능한 한 최대한 고려된다.

2) 가호에 따른 결정 요청의 제출 이전에, 의장 중재인이 제 11 장(투자)의 제 2 절에 따라 임명되었던 경우, 그러한 중재인은 어느 한쪽 분쟁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체되며, 그 중재판정부는 다호 1 목에 따라 재구성된다. 라호에 따라 중재절차가 재개된 날부터 30 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가 새로운 의장 중재인의 임명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분쟁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호 1 목에 합치되도록 의장 중재인을 임명한다. 그리고

3) 청구인의 당사국은 제 8.10 조가 청구에 대하여 유효한 항변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어느 한도에서 인정되는지의 문제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구두 및 서면 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이 그러한 입장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의 목적상, 청구인의 당사국은 제 8.10 조에 대한 피청구국의 입장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라. 청구에 대하여, 가호에 언급된 중재는

1) 분쟁 당사자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경우 그 중재판정부가, 위원회의 결정을 접수한 날부터 10 일 후, 또는

2) 다호에서 위원회에 주어진 60 일 기간 만료일부터 10 일 후 진행될 수 있다.

2. 제 11.28 조(정의)에 규정된 다음 용어의 정의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조에 통합된다: 청구인, 분쟁당사자들, 분쟁당사자, 피청구국 및 사무총장

제 8.20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그러한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을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이란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의 금융서비스 공급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한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금융서비스 공급

그러나 이는 당사국 영역에서의 투자에 의한 그 영역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금융기관이란 그 기관이 소재하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을 하도록 인가되고 규제되거나 감독되는 모든 금융 중개업자 또는 그 밖의 기업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란 지사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지배하는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금융서비스란 금융적 성격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에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과 보험 관련 서비스, 그리고 모든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가. 직접보험(공동보험을 포함한다)

1) 생명보험, 그리고

2) 손해보험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라.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마.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바. 소비자대출, 주택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융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사. 금융리스

아. 신용, 선불 및 직불 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자. 보증 및 약정

차.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로 거래하는 것

1) 화폐시장 상품(수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

2) 외환

3)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

4) 스왑, 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5) 양도성 증권, 그리고

6)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

카.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타. 자금중개업

파.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모든 유형의 집합투자운용, 연금기금운용, 보관, 예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운용

하. 증권, 파생상품 그리고 그 밖의 유통증권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거.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너. 신용조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마호부터 거호까

지에 기재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 서비스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투자란 제 11.28 조(정의)에 정의된 "투자"를 말한다. 다만, 그 조에 언급된 "대부" 및 "채무증서"에 대하여는 다음을 말한다.

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는 그 기관이 소재하는 영역의 당사국에 의하여 규제 자본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만 투자이다. 그리고

나. 가호에 언급된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이외에,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채무증서는 투자가 아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이외에,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대부 또는 소유하는 채무증서는 그러한 대부 또는 채무증서가 제 11.28 조(정의)에 규정된 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제 11 장(투자)의 목적상 투자이다.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투자하고자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한쪽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이중국적자인 국민은 그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간주된다.

신금융서비스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는 제공되지 아니하나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는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를 말하며, 금융서비스의 모든 새로운 형태의 제공방법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판매되지 아니하는 금융 상품의 판매를 포함한다.

당사국의 인이란 제 1.4 조(정의)에 정의된 "당사국의 인"을 말하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당사국 기업의 지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이란 당사국의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 또는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말한다. 당사국의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 또는 금융규제 기능을 수행하고 당사국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모든 금융기관[17]은, 제 14.4 조(경쟁 중립성)의 목적상, 공기업/국유기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자율규제기구란 유가증권 또는 선물 거래소나 그 시장, 청산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협회를 포함하여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의 법령 또는 위임에 의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나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비정부 기관을 말한다. 자율규제기구는 제 14.4 조(경쟁 중립성)의 목적상, 공기업/국유기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7] 한국 예금보험공사는 제 14 장(경쟁 정책)의 목적상 공공기관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속서 8-가
국경 간 무역

한국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제 8.5 조제 1 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 8.20 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1)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운송(위성을 포함한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운송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2) 국제적으로 통과중인 상품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상담,[18] 위험평가,[19] 계리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라. 제 8.20 조 금융서비스의 정의 다호에 언급된 중개 및 대리와 같이, 이 항의 가호 및 나호에 열거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 중개

2. 제 8.5 조제 1 항은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에 대하여 제 8.20 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다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3. 제 8.5 조제 1 항은 다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가. 금융 정보[20]의 제공 및 이전

나.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2 년 이내에 제 8.20 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련한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21] 그리고

[18] "상담"이란 기업전략구축, 마케팅 전략, 또는 상품 개발 전략에 대한 자문 제공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19] "위험평가"란 위험 분석, 위험 예방, 또는 난해하거나 이례적인 위험에 관련된 전문가 자문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2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5 항가호에 언급된 "금융 정보"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간행물 안에 포함되거나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금융 또는 사업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제 8.20 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련한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다. 중개를 제외한, 제 8.20 조의 금융서비스 정의의 너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

다. 중개를 제외한, 제 8.20 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너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 이 약속은 한국에서 발행되는 증권[22]과 관련한, 신용평가, 신용조회 및 조사, 일반 펀드사무관리, 간접투자기구 평가 및 채권 평가의 공급에 대하여는, 한국이 그러한 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된다. 이 약속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한국 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또는

2) 한국 내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한국에서의 대부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신용조회 및 조사

호주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4. 제 8.5 조제 1 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 8.20 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1)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운송(위성을 포함한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운송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2) 국제적으로 통과중인 상품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상담, 위험평가, 제리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라. 제 8.20 조 금융서비스의 정의 다호에 언급된 중개 및 대리와 같이, 이 항의 가호 및 나호에 열거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 중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5. 제 8.5 조제 1 항은 다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가. 금융 정보의 제공 및 이전

[21] 이는 관련 규제당국으로부터의 사전 인가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22] 이 협정의 서명 시점에, 한국 영역 내에서 발행되는 증권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화로만 표시된다. 한국 영역 밖에서 발행된 채권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한국의 집합투자기구에 의하여 보유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는 한국 영역 내의 채권평가회사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부속서 8-나
구체적 약속

제 1 절
정보의 이전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그 기관의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처리를 위하여 자국 영역 안과 밖으로 정보를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한국은 이 협정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밖의 국제무역협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유사한 약속의 발효일 이내에, 이 약속에 효력을 부여한다.

2. 그러한 권리가 이 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한, 제 1 항의 어떠한 규정도 소비자의 민감 정보를 보호하고 그러한 정보의 무단 재사용을 금지하는 그 당사국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정보의 취급과 관련된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기록에 접근하고 기술설비의 위치에 대하여 요구할 자국 금융규제당국의 권리를 유보한다.

제 2 절
기능의 수행

1. 양 당사국은 당사국 영역 내의 금융기관이 그 당사국의 영역 안 또는 밖에 소재한 그 기관의 본점 또는 계열사에서 일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23]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그러한 본점 또는 계열사가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기능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확인서 및 내역서 작성을 포함한 매매 및 거래처리 기능

   나. 데이터처리,[24]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개발과 같은 기술 관련 기능

   다. 조달, 출장 지원, 우편 서비스, 물리적 보안, 사무실 공간 관리 및 비서 서비스를 포함한 행정 서비스

   라. 훈련 및 교육을 포함한 인력관리 업무

   마. 은행정산업무, 예산수립, 보수, 세금, 회계조정, 그리고 고객 및 자기계정을 포함한 회계 기능, 그리고

   바. 자문 및 소송 전략의 제공을 포함한 법무 기능

2. 제 1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일정한 기능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2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은 그 본점 또는 계열사가 수행하는 기능에 적용가능한 요건의 준수에 대하여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

[24] 당사국이 부속서 8-나 제 2 절에 따라 자국 영역 밖으로 정보의 이전을 허용할 의무를 지는 한도에서, 그 당사국은 또한 이전 후 그 정보의 데이터처리를 허용한다.

제 3 절
감독 협력

양 당사국은 소비자 보호와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을 방지, 적발 및 고발하기 위한 규제당국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규제당국에 지원을 제공하는 각 당사국의 금융규제당국의 노력을 지지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금융규제당국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금융규제당국이 양해각서 또는 특별 약속과 같은 양자 간 협의 또는 양자 또는 다자 간 국제협력 메커니즘을 통하여 이러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자의 진행 중인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제 4 절
일정 정부 기관

양 당사국은 다음 기관이 이 장의 목적상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및 한국투자공사. 양 당사국은 또한 우정사업본부가 현재 금융기관으로서 규제되지 아니하는 정부기관임을 인정한다.

제 5 절
국경 간 무역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정보 또는 통계 목적으로만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그 공급자가 공급해 온 금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그 공급자의 경쟁상의 지위를 저해하게 될 모든 공개로부터 비밀 영업 정보를 보호한다.

제 6 절
최고 경영자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8.8 조의 어떠한 규정도 자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최고 경영자가 자국 영역 내에서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국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7 절
포트폴리오 운용

1. 당사국은 자국 영역 밖에서 조직된 금융기관(신탁회사를 제외한다)이 자국 영역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 자문 및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보관 서비스, 신탁 서비스 및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되지 아니한 실행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약속은 제 8.1 조 및 제 8.5 조제 3 항을 조건으로 한다.

2. 제 1 항의 목적상, 한국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 자문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의 공급은 한국이 그러한 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된다.

3. 제 1 항의 목적상, "집합투자기구"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 조제 18 항 제 1 호부터 제 9 조제 18 항제 6 호까지에 정의된 집합투자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모든 기구, 그리고

나. 호주의 경우,

1) 2001 년 회사법 제 9 절에 규정된 운용투자기구, 단, 2001 년 회사법 부속절 601ED(5)를 위반하여 운용되는 운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2) 다음의 기관

가)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토지에 대한 투자, 또는 그 밖의 투자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그리고

나)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모집된 자금이 투자될 것이라는 조건하에 이루어진 (2001 년 회사법 제 82 절의 의미 내에서의) 공중에 대한 오퍼 또는 공모 이후 모집된 자금을 투자하는 기관

제 8 절
정부조달

1. 제 8.1 조제 4 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이 장이 제 8.1 조제 3 항가호 및 나호에 규정된 활동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는 한도에서, 다음 서비스의 취득 또는 조달에 대하여 제 8.2 조 및 제 8.3 조를 적용한다.

가. 중앙정부 채무의 관매, 상환 및 배분에 관한 서비스

나. 중앙정부의 국고 및 공탁 계좌의 보유에 관한 서비스, 그리고

다. 다음 자산의 운용에 관한 서비스

1) 한국의 경우, 한국투자공사의 자산, 그리고

2) 호주의 경우, 퓨처펀드의 자산

제 9 장
통신

제 9.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통신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방송국 및 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이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 이 장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케이블로 배급하는 것에 관한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 · 구축 · 취득 · 임대 · 운영 또는 공급하도록 기업에게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 또는

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이나 케이블 배급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에게 자사의 방송 또는 케이블 설비를 공중 통신 망으로서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

제 9.2 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이 장이 우선한다.

제 1 절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제 9.3 조
접근 및 이용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전용회선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건너 제공되는 모든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제 2 항부터 제 6 항까지에 규정된 조건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가. 공중 통신 망에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

대하고 부착하는 것

나. 소유 또는 전용 회선을 통하여 개별 또는 복수의 최종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다. 소유 또는 전용 회선을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또는 국경 간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와 접속하거나,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전용 또는 소유 회선과 접속하는 것

라. 교환 · 신호 · 처리 및 변환 기능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마. 모든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선택한 운용 규약을 사용하는 것

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사내통신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넘어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어느 한쪽 당사국이나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당사자인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포함되거나 달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메시지의 보안 및 기밀성 보장, 그리고

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최종이용자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

다만,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 서비스 책임, 특히 그들의 망 또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이용가능 하도록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 또는

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

6. 제 5 항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조건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인터페이스규약을 포함하여,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하여 특정의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나. 필요한 경우,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요건, 그리고

다. 망과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과 그 장비를 그러한 망에 부착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적 요건

제 2 절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제 9.4 조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 관한 의무[25]

상호접속

1. 각 당사국은

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 영역 내에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상호접속의 요율과 조건은 일반적으로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된 서비스 공급자간의 상업적 협상을 통하여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나. 가호를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및 최종이용자의, 또는 이들에 관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정보를 이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보장한다.

번호이동성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번호이동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동등 다이얼

3.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동일한 범주의 서비스 내에서 동등 다이얼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가질 것,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전화번호에 대한 비차별적인 접근이 부여될 것

제 3 절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추가 의무[26]

[25] 이 조는 부속서 9-가를 조건으로 한다.
[26] 이 절은 부속서 9-나를 조건으로 한다.

제 9.5 조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에 관하여 그러한 지배적 사업자가 동종의 상황에서 자신의 자회사, 계열사 또는 비계열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가. 동종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공급, 요율 또는 품질, 그리고

   나. 상호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이용가능성

제 9.6 조
경쟁보장장치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유지한다.

2. 제 1 항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나.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다.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그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라. 약탈적 가격 책정을 포함하여, 불합리하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

제 9.7 조
재판매

1. 그러한 조건 또는 제한이 반경쟁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자신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재판매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이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에게 그러한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소매로 제공하는 공중 통신 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재판매를 위하여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국은 그러한 서비스가 합리적인 요율로 재판매를 위하여 제공되도록 보장한다.[27]

[27] 제 2 항의 목적상,

   가. 당사국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합리적인 요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나.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설정된 도매요율은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제 9.8 조
망 요소 세분화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세분화에 기초하여, 그리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게 부여한다.

제 9.9 조
상호접속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설비 및 장비를 위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가. 그 지배적 사업자의 망 내의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나. 비차별적인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요율에 따라

   다.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그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품질로

   라.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상호접속을 하고자 하는 공급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그리고

   마.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자신들의 설비와 장비를 다음 선택권 중 최소한 하나에 따라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의 설비 및 장비와 상호접속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28]

   가. 지배적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의하는 요율 및 조건을 포함하는 표준상호접속제안 또는 다른 표준상호접속제안

   나. 기존 상호접속협정의 조건, 또는

[28] 호주의 경우, 이러한 선택권은 중재를 포함한다.

다. 새로운 상호접속협정의 협상을 통하여

3.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적용가능한 절차가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에 상호접속협정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5. 각 당사국은 제 2 항가호에 따라 상호접속이 제공되는 경우 요율 및 조건이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제 9.10 조
전용회선 서비스의 공급 및 가격책정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합리적인 기간 동안,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요율로 공중 통신 서비스인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2. 제 1 항을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공중 통신 서비스인 전용회선 서비스를 용량 기반의 원가지향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 부여한다.

제 9.11 조
설비 병설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상호접속 또는 세분화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에 필요한 장비의 물리적 설비 병설을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설비 병설이 기술적 이유 또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실행가능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대안적 해결책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자국 영역의 어느 구역이 제 1 항 및 제 2 항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다.

제 9.12 조
통신 설비에 대한 접근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지배적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전주, 관로, 도관, 선로설치권, 그리고 그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그 밖의 모든 구조물에 대한 접근을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 및 요율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자국 영역 내의 지배적 사업자에게 제 1 항에 따라 접근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전주, 관로, 도관, 선로설치권, 또는 그 밖의 구조물을 결정할 수 있다.

제 4 절
그 밖의 조치

제 9.13 조
해저 케이블 시스템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저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자국 영역에 공급자가 소재한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의 해저케이블 시스템(육양 설비를 포함한다)에 대한 접근[29]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제 9.14 조
부가서비스의 공급조건

1.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이 부가 서비스의 공급자로 분류한 자국 영역의 서비스 공급자로서 그 공급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설비를 통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가. 그러한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공급할 것

나. 그러한 서비스 요율을 비용상 정당화할 것

다. 그러한 서비스의 요율표를 제출할 것

라.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자사 망을 특정 고객과 연결할 것, 또는

마. 공중 통신 망 이외의 다른 망에 연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의 특정 표준 또는 기술 규정을 준수할 것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자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특정 경우에 있어 반경쟁적인 것으로 판단한 부가서비스 공급자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또는 달리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 기술

[2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 해저 케이블 육양 설비에 대한 접근은 용량을 조건으로 하며,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설비를 소유하지 아니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접근에 대하여, 한쪽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허가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임치된 설비, 또는 그 공급자로부터 제공되는 공중 통신 서비스를 통한 해저케이블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

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9.15 조
독립적인 규제기관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모든 공중 통신 서비스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기능적으로 독립적일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그러한 공급자에 대하여 지분[30]을 소유하거나 운영 또는 경영 역할을 유지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의 결정 및 절차가 모든 시장 참여자[31]에 대하여 공평하고,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이행되도록 보장한다.

제 9.16 조
보편적 서비스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자국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가 자국이 정의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 9.17 조
허가 절차

1. 당사국이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할 때, 그 당사국은 다음을 공개한다.

   가. 자국이 적용하는 모든 허가 기준 및 절차

   나.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그리고

   다. 발효 중인 모든 허가의 조건

2. 각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 거부 · 취소 · 갱신 거부 또는 조건 부과 사유를 신청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은 통신규제기관 이외의 당사국 정부기관이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3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장 참여자"라는 용어는 그 통신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다.

제 9.18 조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 및 이용

1. 각 당사국은 주파수 · 번호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2. 각 당사국은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되거나 할당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공하도록 요청받지 아니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며 주파수를 관리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제 7.4 조(시장접근)가 제 7 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적용되든지 또는 제 7.1 조(적용범위)의 운영을 통하여 제 11 장(투자)에 적용되든지 간에, 그 자체로 제 7.4 조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아니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전파 및 주파수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그 당사국은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 및 미래의 수요를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4. 각 당사국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전파의 사용과 통신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장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공익을 고려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비정부 통신 서비스용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도록 노력하고, 당사국이 행정적 유인 가격책정, 경매 또는 비면허 사용에 의한 것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에 의하여 이러한 행위를 장려할 수 있음을 인정하도록 노력한다.

제 9.19 조
집행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게 제 9.3 조부터 제 9.13 조까지의 의무에 관한 당사국의 조치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 그러한 권한은 금전적 벌칙, 구제명령(잠정적 또는 최종적), 시정 명령이나 허가의 수정 · 정지 또는 취소를 포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를 부과하거나 행정 또는 사법기관을 통하여 부과하려는 능력을 포함한다.

제 9.20 조
통신 분쟁의 해결

제 19.3 조(행정절차) 및 제 19.4 조(재심 및 불복청구)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구제신청

   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는 제 9.3 조부터 제 9.13 조까지의 사안에 관한 조치와 관련하여,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시의적절하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나. 당사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한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는, 그 공급자가 상호접속을 요청한 후 공개적으로 명시된 합리적 기간 내에, 그러한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조건과 요율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사법적 재심

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이익이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서비스 공급자는 그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당국에 의한 그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어떠한 당사국도, 관련 사법기관이 달리 판정하지 아니하는 한, 사법적 재심의 신청이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구성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 9.21 조
투명성

제 19.1 조(공표)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그러한 결정의 근거를 포함하여 자국 통신규제기관의 규제 결정이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달리 공개되도록 할 것

나. 다음을 포함하여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자국의 조치가 공개될 것

1) 서비스의 요율 및 그 밖의 조건

2)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규격

3)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공중 통신 망에 부착하기 위한 조건

4) 통보, 허가, 등록 또는 면허 요건이 있으면, 그러한 요건

5) 접근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또는 표준에 관한 조치의 개정 및 채택, 그리고

6) 사법적 또는 행정적 재심에 관한 절차, 그리고

다. 자국의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이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에 대하여, 제 9.9 조, 제 9.11 조 및 제 9.12 조에 명시된 종류의 접근을 거부하는 모든 결정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

제 9.22 조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32]

1. 어떠한 당사국도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또는 부가서비스의 공급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기술을 선택할 유연성을 갖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또는 부가서비스의 공급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술 또는 표준을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치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고안되어야 하며,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입안, 채택 또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33].

제 9.23 조
업계와의 협의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 영역에 있는 모든 통신 산업 종사자에게 공개되는 방식으로 통신 정책, 규정 및 표준의 개발에 있어 자국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협의를 촉진한다.

제 9.24 조
국제기구와의 관계

양 당사국은 통신 망 및 서비스의 국제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위한 국제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 전기통신연합과 국제표준화기구를 포함하여,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작업을 통하여 이러한 표준을 증진할 것을 약속한다.

제 9.25 조
통신 위원회

1.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 목적상, 제 21.4 조(위원회 및 작업반)에 따라 설치되는 통신 위원회는 통신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2. 위원회는

---

[3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을 제외하고, 이 조는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채택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 당사국은 자국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정의할 권리를 보유하며,
나. 그러한 조치가 관련 국제 표준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반박이 가능하다.

가. 이 장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하고 점검한다. 그리고

나. 이 장에 관련된 모든 사안과 양 당사국의 통신 분야와 관련되는 그 밖의 사안을 논의한다.

3. 제 21.4 조(위원회 및 작업반)에 더하여,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위원회의 조사결과와 논의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4.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 회합한다.

5. 양 당사국은 상호 동의에 의하여, 민간 영역의 관련 기관 대표를 포함하여, 논의될 사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양 당사국의 정부가 아닌 관련 기관의 대표를 위원회 회합에 참여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제 5 절
정의

제 9.26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물리적) 설비 병설이란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통제하고 사용하는 구역에서 장비를 설치·유지 또는 수리하기 위한 공간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말한다.

상용 이동 서비스란 이동무선수단을 통하여 제공되는 공중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원가지향이란 원가에 기초함을 말하며,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설비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른 비용산출방법을 수반할 수 있다.

동등 다이얼이란, 최종이용자가 선택하는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 관계없이, 그리고 비합리적인 다이얼의 지연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유형의 공중 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하여 동등한 자리수를 사용할 수 있는 최종이용자의 능력을 말한다.

최종이용자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 이외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 공중 통신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 또는 가입자를 말한다.

필수 설비란 다음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는 것, 그리고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것

상호접속이란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전용회선이란 이용자의 전용 사용 또는 이용가능성을 위하여 따로 둔 둘 이상의 지정된 지점 간 통신 설비를 말한다.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를 말한다.

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망 요소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에 이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하며, 그러한 설비 또는 장비에 의하여 제공되는 특징·기능 및 성능을 포함한다.

비차별적이란 동종의 상황에서 동종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그 밖의 모든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번호이동성이란 공중 통신 서비스의 최종이용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를 동일한 유형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로 바꿀 때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전화번호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공중 통신 망이란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통신 기반을 말한다.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란 공중 통신 망, 또는 공중 통신 서비스, 또는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를 말한다.

공중 통신 서비스란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한 서비스는 특히 고객의 정보를 형태나 내용 면에서 종단간의 변경 없이 둘 이상의 지점 간의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를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전화 및 데이터 전송을 포함할 수 있으며, 부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을 말하며,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다.

통신이란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한다.

통신규제기관이란 통신의 규제를 담당하는 중앙정부의 기관 또는 기관들을 말한다.

이용자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최종이용자 또는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

부가 서비스란 제고된 기능을 통하여 통신 서비스에 가치를 부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한국의 경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2 조 12 호에 정의된 서비스를 말한다. 호주의 경우, 이는 공급자가 형식이나 내용을 제고함으로써 또는 저장이나 복구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정보에 "가치를 더하는"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부속서 9-가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

한국

제 9.4 조제 3 항은 국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하여 한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9-나
제3절의 예외: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지배적 공급자에 관한 추가 의무

한국

1.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별정통신 사업자인 한도에서, 지배적 공급자는 제 9.8 조, 제 9.9 조제 1 항가호, 제 9.9 조제 1 항마호, 제 9.11 조 및 제 9.12 조에 명시된 의무의 적용에서 면제된다.

2. 제 9.9 조제 1 항나호, 제 9.9 조제 1 항라호 및 제 9.10 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제시하는 요율 및 조건에 비하여 차별적인 요율 및 조건을 공중 통신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에게 제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규정은 제 9.20 조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공중 통신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는 그러한 요율 및 조건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3. 전기통신사업법 제 5 조 3 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 는 유선이나 무선 또는 다른 전송 설비를 소유하지 아니하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를 소유할 수 있으며, 허가된 기간통신 사업자의 전송 설비를 통하여 자신의 공중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는 허가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이다.

4. 지배적 사업자는, 그들이 상용 이동 서비스를 공급하는 한도에서, 제 9.5 조, 제 9.7 조, 제 9.8 조, 그리고 제 9.10 조, 제 9.11 조 및 제 9.12 조에 명시된 의무의 적용에서 면제된다.

제 10 장
자연인의 이동

제 10.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부속서 10-가에 언급된 모든 범주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하는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은 양 당사국 간의 상호 호혜적 무역 관계,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기업인의 일시 입국을 촉진하고 일시 입국에 대한 투명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려는 양 당사국의 공동의 희망, 그리고 국경 안전을 보장하고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국내 노동력과 영구적 고용을 보호할 필요성을 반영한다.

3.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시민권 또는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거주나 고용에 관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장은 한쪽 당사국이 자국 국경의 일체성을 보전하고 자국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 자연인의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 또는 자국 영역 내의 일시 체류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가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인에 대하여 한쪽 당사국 영역으로 입국하기 전에 자격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10.2 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 제 1 장(최초 규정 및 정의), 제 10.6 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 20 장(분쟁 해결), 제 21 장(제도 규정), 제 22 장(일반적 규정 및 예외) 및 제 23 장(최종규정)과 제 19.1 조(공표), 제 19.2 조(정보 제공) 및 제 19.3 조(행정절차)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에 이 장의 적용범위 내에서의 그 당사국의 출입국 조치에 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10.3 조
일시 입국의 허용

1. 각 당사국은 부속서 10-가에 명시된 자연인의 각 범주별로 자국의 구체적 약속을 부속서 10-가에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부속서 10-가의 범주의 조건을 포함하여,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에 대하여 일시 입국을 허용한다. 다만, 그 자연인은 일시 입국을 허용하는 당사국의 적용가능한 관련 법과 규정, 그리고 그에 따라 취해진 모든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부속서 10-가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에게 발급될 비자의 총 수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34]

제 10.4 조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요건 및 절차

1.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연인에 대하여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 및 자국 영역 내 일시 체류를 허용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에 도착하기 전에 부여될 수 있는 출입국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추가적인 출입국 절차 요구나 절차의 연장을 포함하여,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으로부터 접수된 완전한 출입국 절차 신청을 신속히 처리한다.

3. 일시 입국을 요청하는, 이 장의 적용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신청 완료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가. 신청의 접수

나. 신청의 상태, 그리고

다. 다음을 포함하는 신청과 관련한 결정

1) 승인될 경우, 체류 기간 및 그 밖의 조건, 또는

2) 거절될 경우, 거절 사유 및 재심을 위한 모든 방법

4. 각 당사국은 출입국 절차 신청에 관한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부과된 수수료가 그 자체로 이 장에 따른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이동에 부당한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5.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이동과 관련한 절차 및 요건을 자국의 법과 규정의 틀 내에서 간소화하도록 노력한다.

[3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호주의 경우 '제한' 이라는 용어는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을 포함한다.

제 10.5 조
온라인 신청 및 처리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출입국 절차의 온라인 신청 및 처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 10.6 조
분쟁 해결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2. 제 20 장(분쟁 해결)에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는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이 장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그 사안이 반복된 관행과 관련되는 경우, 그리고

나. 관련 당사국의 자연인이 그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가능한 경우 행정적 구제 절차들을 완료하였을 경우

3. 그러한 구제를 위한 절차(재심이나 불복청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개시된 때부터 1 년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한 최종 판정이 내려지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관련된 자연인이 야기한 지체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 2 항나호에 언급된 구제조치들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10.7 조
투명성

제 19.1 조(공표) 및 제 19.2 조(정보 제공)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6 개월 이내에, 이 장에 따른 일시 입국 요건에 관한 설명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이 그 요건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한다. 그리고

나.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연인의 일시 입국과 관련된 조치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제 10.8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출입국 절차란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 일시 입국하도록 허용하는 비자, 허가 또는 그 밖의 모든 문서 또는 전자적 허가문서를 말한다.

당사국의 자연인이란 그 당사국의 법에 따른 다음의 자연인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 그리고

나. 호주의 경우, 호주 시민 또는 영주권자, 그리고

일시입국이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연인의 영구적 거주의 의도가 없는 입국을 말한다.

부속서 10-가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구체적 약속

제 1 절
한국의 구체적 약속

1. 한국은 이 장 및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자국 영역으로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호주의 기업인에 대하여, 입국 전 적절한 출입국 절차를 취득할 것을 요구한다.

2. 한국은 진행 중인 노동 분쟁에 연관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노동 분쟁의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자연인에 대하여 일시 입국의 허용을 거부할 수 있다.

호주의 상용 방문자

3. 호주의 상용 방문자에 대하여, 고용 허가를 취득할 것을 그 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하고 90 일 이하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된다. 다만, 그 상용 방문자가 일시 입국에 적용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4. 호주의 상용 방문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호주의 자연인을 말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서비스 판매자로서 서비스 판매를 협상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한국 영역에 입국하는 자

2) 상품의 판매를 협상하기 위하여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그러한 협상이 일반 공중에 대한 직접 판매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3)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피고용인으로서 제 6 항에 정의된 관리자, 임원 또는 전문가이고 투자를 설립하기 위하여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나. 제안된 영업 활동을 위한 보수의 일차적 소득원, 주된 영업소 및 실제 이윤 발생 장소가 적어도 대부분 한국 밖에 있는 자

호주의 기업 내 전근자

5. 호주의 기업 내 전근자는 3 년까지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되며, 그러한 입국 및 일시 체류의 근거가 된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는한, 이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인이 일시 입국에 적용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6. 기업 내 전근자란 한국 영역에 설립된 자회사, 지점 또는 지정된 계열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피고용인으로서, 일시 입국의 신청일 직전 1 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있었으며,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임원이란 주로 조직의 경영을 지휘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넓은 재량을 행사하며, 그 회사의 고위급 임원, 이사회 또는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휘를 받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임원은 조직의 실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임무는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다.

나. 관리자란 주로 조직 또는 그 조직의 부서를 지휘하고, 다른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며, 채용 및 해고 권한이나 채용·해고 또는 다른 인사 조치를 권고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일상적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이는 감독을 받는 피고용인이 전문직이 아닌 한 제일선의 감독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주로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 전문가란 지속적인 전문성을 지닌 고급 지식과 조직의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또는 경영에 대하여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하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호주의 무역업자 및 투자자

7. 감독자나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핵심 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다음 활동을 하고자 하는 호주의 기업인은 2 년까지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되며, 그러한 입국 및 일시 체류의 근거가 된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이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인이 일시 입국에 적용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가. 주로 한국과 호주 사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실질적인 무역을 수행하는 것, 또는

나. 그 인 또는 그 인의 기업이 상당한 금액의 자본 투자를 약정했거나 약정하는 과정에 있는 투자를 설립, 개발 또는 운영하거나 투자의 운용에 자문이나 핵심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호주의 계약서비스 공급자

8. 부록 10-가-1 에 규정된 직업의 계약서비스 공급자로서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호주의 자연인은 최대 1 년 또는 계약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의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된다. 다만, 그러한 인은 일시 입국에 적용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9. 계약서비스 공급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호주의 자연인을 말한다.

가. 전문적 지식의 이론적 및 실질적 적용을 요구하는 전문화된 직업에 고용되어 있거나 그러한 직업에 종사할 것

나. 한국의 법, 규정 또는 요건에 따라 제공될 서비스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문적 및 직업적 자격요건과 직업적 자격이 있고 능력에 기반한 경험을 보유할 것

다. 한국에 상업적 주재를 두지 아니하는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계약된 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한편, 그 기업은 공급되는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한국의 기업으로부터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서비스 계약을 취득하였을 것, 그 계약은 한국의 법과 규정을 따른다.

라. 입국 신청일 직전 1 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 기업의 피고용인이었을 것, 그리고

마. 한국 소재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아니할 것이 요구될 것

10. 전문가의 일시 입국의 조건으로 노동시장테스트가 요구되거나, 전문가의 일시 입국과 관련한 수량제한이 부과될 수 있다.

동반 배우자 및 부양가족

11. 이 장에 따라 일시 입국의 자격을 갖춘 호주의 기업 내 전근자, 무역업자, 투자자 또는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동일한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된다. 다만, 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일시 입국에 적용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한국의 관련 법, 규정 또는 요건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취업 허가가 부여될 수 있다.

제 2 절
호주의 구체적 약속

1. 호주는 이 장 및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자국 영역으로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한국의 자연인에 대하여, 입국 전 적절한 출입국 절차를 취득할 것을 요구한다. 이 부속서에 따른 일시 입국의 허용은 일시 입국 허용의 신청 당시에 적용가능한 경우 호주의 이민법과 규정에 포함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 5 항부터 제 11 항까지에 따른 일시 입국 허용을 위한 자격 요건은 고용주의 추천과 직업 요건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한국의 상용 방문자

2. 제 4 항가호에 언급된 한국의 상용 방문자는 90 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된다.

3. 제 4 항나호에 언급된 한국의 상용 방문자는 6 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되며, 체류의 연장이 가능하다.

4. 한국의 상용 방문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한국의 자연인을 말한다.

   가. 투자 목적을 포함한 상용 목적으로 호주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연인으로서, 방문 기간 동안의 보수와 재정적 지원이 호주 밖의 소득원으로부터 나와야 하며, 일반 공중에 대한 직접 판매에 종사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 자체의 공급에 종사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자, 또는

   나. 호주에 기반을 두지 아니하는 자연인인 서비스 판매자로서, 방문 기간 동안의 보수와 재정적 지원이 호주 밖의 소득원으로부터 나와야 하며, 서비스 공급 기업의 판매 대리인으로서 서비스 판매를 협상할 목적으로 또는 그 서비스 공급 기업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자

한국의 기업 내 전근자

5. 제 7 항가호에 언급된 한국의 기업 내 전근자는 4 년까지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되며, 체류의 연장이 가능하다.

6. 제 7 항나호에 언급된 한국의 기업 내 전근자는 2 년까지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되며, 체류의 연장이 가능하다.

7. 한국의 기업 내 전근자란 지점, 자회사 또는 계열사를 통하여 호주에 설립되고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한국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호주 내 그 기업의 지점,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보직을 채우기 위하여 파견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임원 또는 고위 관리자로서, 호주 내 기업 운영의 전체 또는 실질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자연인이며, 주로 그 기업의 고위급 임원, 이사회 또는 주주로부터 그 기업 또는 그 기업의 부서 또는 하부 조직에 대한 지휘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휘를 받고, 그 밖의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며, 그 기업의 부서 또는 하부 조직의 목표와 방침을 수립할 권한을 보유하는 자, 또는

   나. 전문가로서, 고급 무역, 기술 또는 전문 능력 및 경험이 있는 자연인이며, 그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격, 또는 호주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대체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일시 입국 신청일 직전 2 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인에 의하여 고용되었어야만 하는 자

한국의 독립 임원

8. 한국의 독립 임원은 2 년까지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된다.

9. 한국의 독립 임원이란 한국에 본사를 두고 호주에 그 기업의 지점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을 말하며, 그 기업의 호주 내 운영의 전체 또는 실질적인 부분을 담당할 자연인으로서 주로 그 기업의 고위급 임원, 이사회 또는 주주로부터 그 기업 또는 그 기업의 부서 또는 하부 조직에 대한 지휘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휘를 받고, 그 밖의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며, 그 기업의 부서 또는 하부 조직의 목표와 방침을 수립할 권한을 보유한다.

한국의 계약서비스 공급자

10. 한국의 계약서비스 공급자는 1 년까지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되며, 체류의 연장이 가능하다.

11. 한국의 계약서비스 공급자란 무역, 기술 또는 전문 능력 및 경험이 있고, 그들의 지정 직업을 위한 호주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필요한 자격, 기술 및 업무 경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다음에 해당하는 한국의 자연인을 말한다.

   가. 호주 내에서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호주 내에 상업적 주재를 하지 아니하는 한국 기업의 피고용인, 또는

   나. 호주 내에서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기업에 고용된 자

동반 배우자 및 부양가족

12. 이 장에 따라 12 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입국 및 일시 체류의 권리가 부여되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한국의 자연인에 대하여, 호주는 신청에 따라 그 동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그 자연인과 동등한 기간 동안의 입국 및 일시 체류, 이동 및 노동의 권리를 부여한다.

부록 10-가-1
계약서비스 공급자 목록

1. 건설 및 발전 장비를 제외한 산업 장비 또는 기계류의 설치, 관리 또는 수리와 관련된 서비스로서, 호주에 위치한 자연인을 고용하는 기업으로부터 그 장비 또는 그 기계류를 구입하는 한국 내 기업에 대한 것

2. 정보기술, 전자 상거래, 생명 공학, 나노기술, 디지털 전자 공학 또는 환경 산업에 적용되는 자연과학에 관한 기술적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

3. 회원 계약을 통한 한국 회계 기업 또는 사무소에 대한 자문 서비스로서, 외국 회계 표준 및 감사, 공인회계사의 훈련, 감사 기술의 이전, 그리고 회계, 감사 그리고 부기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위한 것

4. 한국 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와의 공동 계약 형태로의 공동 작업을 조건으로 하는 건축 서비스

5. 경영 컨설팅 서비스, 그리고

6. 다음의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

   가. 컴퓨터 하드웨어의 설치와 관련된 자문 서비스

   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 기초한 이행 서비스

   다. 정보 관리 서비스

   라. 정보 시스템 서비스, 그리고

   마. 자동차에 대한 특수 엔지니어링 디자인 서비스

제 11 장
투자

제 1 절
투자

제 11.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나. 적용대상투자, 그리고

   다. 제11.9조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모든 투자

2.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이나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상황에 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구속하지 아니한다.

제 11.2 조
다른 장과의 관계

1.이 장과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다른 장이 우선한다.

2.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국경 간 서비스공급의 조건으로 채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담보를 기탁하여야 한다는 한쪽 당사국의 요건은, 그 자체만으로 이 장이 그러한 국경 간 서비스의 공급에 관하여 그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장은 기탁된 채권 또는 재정적 담보가 적용대상투자가 되는 한도에서, 그 채권 또는 재정적 담보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3.이 장은 제8장(금융서비스)의 적용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1.3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 인수 · 확장 · 경영 · 영업 ·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 · 인수 · 확장 · 경영 · 영업 ·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투자자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제 11.4 조
최혜국 대우[35]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 인수 · 확장 · 경영 · 영업 ·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 · 인수 · 확장 · 경영 · 영업 ·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제 11.5 조
대우의 최소기준[36]

1. 각 당사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여,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에 따른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을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할 대우의 최소기준으로 규정한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기준이 요구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하는 대우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인 실질적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가. 제1항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를 제공할 의무는 세계의 주요 법률체계에 구현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형사 · 민사 또는 행정적 심판절차에 있어서의 정의를 부인하지 아니할 의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제1항의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을 제공할 의무는 각 당사국이 국제관습법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3.이 협정의 다른 규정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판정이 이 조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아니한다.

[3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 언급된 대우는 제2절에 포함된 것과 같은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 또는 메커니즘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6] 제11.5조는 부속서 11-가에 따라 해석된다.

제 11.6 조
손실 및 보상

1. 제11.12조제5항나호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무력충돌 또는 내란으로 인하여 자국 영역 내 투자가 입은 손실에 관하여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하여 자국이 동종의 상황에서 다음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가. 자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 또는

나. 비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1항에 언급된 상황에서 다음의 결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손실을 입는 경우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징발, 또는

나. 상황의 필요상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파괴

다른 쪽 당사국은 그 투자자에게 그러한 손실에 대하여, 각 경우에 맞게, 원상회복, 보상 또는 양자 모두를 제공한다. 원상회복 및 보상을 모두 제공하는 경우, 양자의 합산 가치는 그 손실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모든 보상은 제11.7조제2항, 제11.7조제3항 및 제11.7조제4항을 준용하여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이도록 한다.

3. 제1항은 제11.12조제5항나호가 아니었다면 제11.3조에 불합치하였을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관한 기존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1.7 조
수용 및 보상[37]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수용이나 국유화("수용")와 동등한 조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할 수 없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나. 비차별적 방식일 것

다.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것, 그리고

라. 세계의 주요 법적 체계에 구현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를 것

[37] 이 조는 부속서 11-가 및 11-나에 따라 해석된다.

2. 제1항다호에 언급된 보상은

가. 지체 없이 지불된다,

나. 수용이 발생하기(이하 "수용일" 이라 한다)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하다,

다.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어떠한 변동도 반영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충분히 실현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다.

3.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사용가능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제1항다호에 언급된 보상은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그 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더한 것보다 적지 아니하다.

4.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하지 아니한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제1항다호에 언급된, 지불일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지불통화로 환산된 보상은 다음을 합한 것보다 적지 아니하다.

가. 수용일의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환산된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가격, 그리고

나. 그 자유사용가능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이자

5. 이 조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강제실시권의 발동이나 지식재산권의 취소, 제한 또는 생성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그러한 발동, 취소, 제한 또는 생성이 제13장(지식재산권)과 합치하는 것을 한도로 한다.

제 11.8 조
송금[38]

1.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모든 송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최초 출자금을 포함한 출자금

나. 이윤, 배당, 자본이득, 그리고 적용대상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에 따른 대금 또는 적용대상투자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청산에 따른 대금

다. 이자, 로얄티 지불, 관리 수수료, 그리고 기술지원 및 그 밖의 수수료

라. 대부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마. 제11.6조 및 제11.7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그리고

바. 분쟁으로부터 발생한 지불

2.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송금이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현물수익이 당사국과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서면 합의에서 승인되거나 명시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한 자국의 법과 규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 또는 현물수익을 금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나.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다. 형사범죄

라.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또는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제 11.9 조
이행요건

1. 어떠한 당사국도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부과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대한 약속 또는 의무부담[39]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출할 것

나.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사용을 달성할 것

다.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할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것

라.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연계된 외화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킬 것

마. 그러한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킴으로써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할 것

[3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11-다는 이 조에 적용된다.

[3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항에 언급된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에 대한 조건은 제1항의 목적상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바. 자국 영역의 인에게 특정한 기술,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이전할 것, 또는

사.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공급하는 서비스를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특정한 지역시장 또는 세계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것

2. 어떠한 당사국도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에 부합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사용을 달성할 것

나.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할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것

다.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연계된 외화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킬 것, 또는

라. 그러한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킴으로써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할 것

3.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와 관련하여,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생산의 입지, 서비스의 공급, 근로자의 훈련 또는 고용, 특정한 시설의 건설 또는 확장, 또는 연구개발의 수행을 자국 영역에서 해야 한다는 요건의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40]

4. 제1항바호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1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또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9조의 범위 내에 해당하고 이에 합치되는 재산권적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조치, 또는

나. 당사국의 경쟁법에 따라 반경쟁적인 것으로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거친 후에 관정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재판소 또는 경쟁당국에 의하여 요건이 부과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이 강제되는 경우[41]

5. 그러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또는 그러한 조치가 국제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나호·다호 및 바호, 그리고 제2항가호 및 나호는 당사국이 환경조치를 포함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다.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전과 관련된 조치

6. 제1항가호·나호 및 다호, 그리고 제2항가호 및 나호는 수출진흥 및 외국원조프로그램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격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7. 제1항나호·다호·바호 및 사호, 그리고 제2항가호 및 나호는 정부조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8. 제2항가호 및 나호는 특혜관세 또는 특혜쿼터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상품의 구성품에 관하여 수입 당사국이 부과하는 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은 그 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어떠한 약속, 의무부담 또는 요건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10. 이 조는, 당사국이 약속, 의무부담 또는 요건을 부과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민간 당사자 간 어떠한 약속, 의무부담 또는 요건의 강제도 배제하지 아니한다. 이 조의 목적상, 지정 독점 또는 공기업이 위임된 정부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민간 당사자는 그러한 실체를 포함한다.

제 11.10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1. 어떠한 당사국도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이 고위 경영직에 특정한 국적의 자연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의 이사회나 산하 위원회의 과반수 또는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다수가 특정 국적이거나 자국 영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건은 자신의 투자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 11.11 조
혜택의 부인

1. 한쪽 당사국은, 비당사국의 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또는 이

[4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 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생산의 입지, 서비스의 공급, 근로자의 훈련 또는 고용, 특정한 시설의 건설 또는 확장, 또는 연구개발의 수행을 자국 영역에서 해야 한다는 요건을 부과 또는 강제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행위는 제1항바호에 합치하여야 한다.

[41] 양 당사국은 특허가 반드시 시장지배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을 인정한다.

장의 혜택이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의 투자에 부여될 경우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러한 기업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 그러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아는 경우, 혜택부인 당사국은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를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통보한다.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 11.12 조
비합치 조치

1. 제11.3조, 제11.4조, 제11.9조 및 제11.10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모든 기존의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

      2)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지역정부, 또는

      3) 지방정부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11.3조 · 제11.4조 · 제11.9조 및 제11.10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2. 제11.3조 · 제11.4조 · 제11.9조 및 제11.10조는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채택되고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의 대상이 되는 조치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그 국적을 이유로 그 조치가 발효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를 매각하거나 달리 처분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4. 제11.3조 및 제11.4조는 제13.1조제6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대로 그 조항에 따른 의무의 예외 또는 이탈인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11.3조 · 제11.4조 및 제11.10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정부조달, 또는

   나.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제 11.13 조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42]

1. 제11.3조의 어떠한 규정도 적용대상투자가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성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당사국이 적용대상투자와 관련하여 특별형식을 규정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형식은 이 장에 따라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하는 보호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제11.3조 및 제11.4조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은 정보수집 또는 통계상의 목적을 위하여만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의 적용대상투자가 그 투자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하게 될 모든 공개로부터 비밀 정보를 보호한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법의 공평하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과 관련하여 정보를 달리 획득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1.14 조
대위변제

1. 당사국 또는 당사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자국 투자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투자에 관한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보장, 보증 또는 보험계약을 승인하였고, 이 보장, 보증 또는 보험계약에 따라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 기관에 의하여 지불이 이루어진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 투자자의 권리에 대한 대위변제 원칙에 따라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 기관의 권리를 인정한다.

2. 한쪽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그 투자자에게 지불을 하고 그 투자자의 권리 및 청구를 인수한 경우, 그 투자자는, 그 지불을 한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승인받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 및 청구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

[42] 투명성 목적으로만, 부속서 11-라는 호주 거주 요건의 예시 목록을 적시한다. 한국이 부속서 11-라에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호주가 적용하는 거주 요건이 한국의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에 대하여 호주가 부여하는 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한다면, 양 당사국은 한국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협의를 개시하고 그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2 절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제 11.15 조
협의 및 교섭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청구인 및 피청구국은 우선 협의 및 교섭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비구속적인 제3자 절차의 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 11.16 조
중재 청구 제기

1. 분쟁당사자가 투자분쟁이 협의 및 교섭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 청구인은, 자기자신을 위하여, 다음의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1) 피청구국이 다음을 위반하였다는 것

         가) 제1절상의 의무

         나) 투자인가, 또는

         다) 투자계약, 그리고

      2) 청구인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 그리고

   나.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피청구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다음의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1) 피청구국이 다음을 위반하였다는 것

         가) 제1절상의 의무

         나) 투자인가, 또는

         다) 투자계약, 그리고

      2) 그 기업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

다만, 청구대상과 청구된 손실이 관련 투자계약에 의거하여 설립 또는 인수되었거나 설립 또는 인수가 추진되었던 적용대상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인은 가호1목다) 또는 나호1목다)에 따라 투자계약의 위반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기 최소 90일 전에, 청구인은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통보(의사통보)를 피청구국에게 전달한다. 그 통보는 다음을 명시한다.

   가.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그리고 기업을 대신하여 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기업의 명칭, 주소 및 설립지

   나. 각 청구마다,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이 협정, 투자인가, 또는 투자계약의 규정과 그 밖의 관련 규정

   다. 각 청구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 그리고

   라. 구하는 구제조치와 청구하는 손해의 대략적 금액

3. 청구를 야기한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청구인은

   가. 피청구국 및 비분쟁당사국이 모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절차의 절차규칙에 따라

   나. 피청구국 또는 비분쟁당사국 중 하나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또는

   라. 청구인 및 피청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 밖의 중재기관에게 또는 그 밖의 중재규칙에 따라 제1항에 언급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4. 청구는 다음의 시점에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36조제1항에 언급된 청구인의 중재통보 또는 중재요청(중재통보)이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추가절차규칙 제3부제2조에 언급된 청구인의 중재통보가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제3조에 언급된 청구인의 중재통보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제18조에 언급된 청구서면과 함께 피청구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 또는

   라. 제3항라호에 따라 선택된 그 밖의 중재기관 또는 중재규칙에 언급된 청구인의 중재통보가 피청구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

그러한 중재통보가 제출된 후 청구인이 최초로 주장하는 청구는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접수일에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5. 제3항에 따라 적용가능하고 이 절에 따라 하나 또는 복수의 청구가 중재에 제기된 날에 유효한 중재규칙은, 이 협정에 의하여 수정된 한도를 제외하고는 그 중재를 규율한다.

6. 청구인은 중재통보와 함께 다음을 제출한다.

가. 청구인이 임명하는 중재인의 성명, 또는

나. 사무총장이 그 중재인을 임명하는 것에 대한 청구인의 서면 동의서

제 11.17 조
중재에 대한 각 당사국의 동의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이 절에 따른 중재 청구를 제기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제1항에 따른 동의와 이 절에 따른 중재 청구 제기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

가. 분쟁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위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2장(센터의 관할권)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의 요건, 그리고

나. "서면 합의"를 위한 뉴욕협약 제2조의 요건

제 11.18 조
각 당사국의 동의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제11.16조제1항에 따라 주장되는 위반사실과 청구인(제11.16조제1항가호에 따라 제기된 청구의 경우) 또는 기업(제11.16조제1항나호에 따라 제기된 청구의 경우)이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최초로 인지하였거나 최초로 인지하였어야 할 날부터 3년이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없다.

2.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청구도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이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중재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그리고

나. 중재통보에 다음이 수반되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 법에 따른 행정재판소나 법원, 또는 그 밖의 분쟁해결절차에서 제11.16조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되는 조치에 대하여 절차를 개시하거나 계속하는 권리에 대한

1) 제11.16조제1항가호에 따라 중재에 제기한 청구의 경우, 청구인의 서면포기서, 그리고

2) 제11.16조제1항나호에 따라 중재에 제기한 청구의 경우, 청구인 및 기업의 서면포기서

3. 제2항나호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제11.16조제1항가호에 따라 제기된 청구의 경우)과 청구인 또는 기업(제11.16조제1항나호에 따라 제기된 청구의 경우)은 피청구국의 사법 또는 행정재판소에서 임시 가처분을 구하고 금전적 손해배상의 지급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소송을 개시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송은 중재가 계속되는 동안 청구인 또는 기업의 권리 및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기되어야 한다.

제 11.19 조
중재인의 선정

1.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각 분쟁당사자는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인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된다.

2. 사무총장은 이 절에 따른 중재를 위하여 임명권자의 역할을 한다.

3. 청구가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날부터 7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사무총장은 한쪽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재량으로 아직 임명되지 아니한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사무총장은 한쪽 당사국의 국민을 의장 중재인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4.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39조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제3부제7조의 목적상, 그리고 국적 이외의 근거로 인한 중재인에 대한 이의제기를 저해함이 없이

가. 피청구국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구성원의 임명에 동의한다.

나. 제11.16조제1항가호에 언급된 청구인은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구성원의 임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조건에서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리고

다. 제11.16조제1항나호에 언급된 청구인은 청구인 및 기업이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구성원의 임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조건에서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계속할 수 있다.

제 11.20 조
중재의 수행

1. 분쟁당사자들은 제11.16조제3항에 따라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법적 중재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지를 결정한다. 다만, 중재지는 뉴욕협약의 당사국인 국가의 영역이어야 한다.

2.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와 중재인들의 편의성, 사건내상의 소재지, 그리고 증거에의 근접성을 포함하는 적절한 요소를 고려하여, 협의 및 심리를 포함하는 회의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앞 문장은 중재판정부가 제1항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어떠한 적절한 요소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3.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영어와 한국어가 모든 심리·입장제출·결정 및 판정을 포함한 전체 중재절차에서 사용되는 공식 언어이다.

4. 비분쟁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구두 및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분쟁당사국은 자국의 구두 입장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5. 분쟁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가 아닌 당사자 또는 실체가 분쟁 범위 내의 사안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외부조언자 서면입장을 제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입장제출 허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재판정부는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다음을 고려한다.

   가. 외부조언자 입장이 분쟁당사자들의 것과는 다른 관점, 특정한 지식 또는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와 관련된 사실적 또는 법적 쟁점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정도

   나. 외부조언자 입장이 분쟁 범위 내의 사안을 다루게 될 정도, 그리고

   다. 외부조언자가 절차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도

중재판정부는 외부조언자 입장이 중재절차를 방해하거나 어느 한쪽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부담을 주거나 불공정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며, 분쟁당사자들이 외부조언자 입장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한다.

6. 다른 이의제기를 본안전 문제로 다룰 수 있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저해함이 없이, 중재판정부는 제기된 청구가, 법률상의 문제로서, 제11.26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있는 청구가 아니라는 피청구국의 이의제기를, 본안전 문제로 다루고 결정한다.

   가. 그러한 이의제기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이 자국의 반론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 또는 중재통보에 대한 수정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이 수정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도록 정한 날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제출된다.

   나.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접수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본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그 밖의 본안전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립한 일정에 합치하도록 그 이의제기를 검토할 일정을 수립하며,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힌다.

   다.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결정함에 있어, 중재판정부는 중재통보(또는 중재통보의 수정)상의 청구내용을 뒷받침하는 청구인의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중재규칙에 따라 제기된 분쟁의 경우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중재규칙 제18조에 언급된 청구서면을 사실이라고 가정한다. 중재판정부는 분쟁 중이 아닌 관련 사실도 검토할 수 있다.

   라. 피청구국이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제7항에 따른 신속절차 이용을 하였거나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국이 권능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나 본안에 관한 어떠한 주장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7.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피청구국이 요청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제6항에 따른 이의제기와 분쟁이 중재판정부의 권능 내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신속히 결정한다. 중재판정부는 본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요청일 후 150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면서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힌다. 그러나, 분쟁당사자가 심리를 요구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는 데 30일을 추가로 소요할 수 있다. 심리가 요구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재판정부는 특별한 이유가 제시되는 때에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는 추가적인 단기간 동안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는 것을 연기할 수 있다.

8. 중재판정부는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피청구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때, 정당한 경우, 이의제기를 제출하거나 반박하는 데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및 변호사 보수가 승소한 분쟁당사자에게 지불되도록 판정할 수 있다. 그러한 판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청구 또는 피청구국의 이의제기가 근거가 없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분쟁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다.

9. 피청구국은, 제11.14조에 규정된 대위변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보험 또는 보증 계약에 따라 주장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배상 또는 그 밖의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고 항변·반소 또는 상계권이나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도 주장할 수 없다.

10.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완전히 유효하게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의 보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증거를 보전하거나 중재판정부 관할권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포함하여, 잠정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압류를 명령하거나 제11.16조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조치의 적용을 금지할 수 없다. 이 항의 목적상, 명령은 권고를 포함한다.

11. 이 절에 따라 수행된 모든 중재에서,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배상책임에 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분쟁당사자들 및 비분쟁당사국에게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을 송부한다. 중재판정부가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을 송부한 날 후 60일 이내에, 분쟁당사자들은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의 어떠한 측면

에 대하여도 중재판정부에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60일의 의견 제출기간이 만료된 날 후 45일 이내에 그러한 모든 의견을 검토하고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린다.

12. 제11항은 제13항 또는 부속서 11-마에 따라 불복청구가 가능하게 된 이 절에 따라 수행된 어떠한 중재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13. 투자분쟁을 심리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 또는 투자 협정에 따라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을 재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소 기구를 설치하는 별도의 다자간 협정이 양 당사국 간에 발효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다자협정이 양 당사국간에 발효된 후에 개시된 중재에서 제11.26조에 따라 내려진 판정을 그러한 상소기구가 재심하도록 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11.21 조
중재절차의 투명성

1. 제2항 ·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청구국은 다음의 문서를 수령한 후 신속하게 비분쟁당사국에게 송부하고 대중에게 이용가능하게 한다.

가. 의사통보

나. 중재통보

다. 분쟁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변론서 · 이유서 및 준비서면과 제11.20조제4항 · 제11.20조제5항 및 제11.25조에 따라 제출된 모든 서면입장

라. 이용가능한 경우, 중재판정부의 심리 의사록 또는 속기록, 그리고

마. 중재판정부의 명령 · 판정 및 결정

2. 중재판정부는 대중에게 공개하여 심리를 수행하며, 분쟁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적절한 절차적 준비사항을 결정한다. 그러나, 보호정보로 지정된 정보를 심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이를 알린다.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정보를 공개로부터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한다.

3. 제22.2조(필수적 안보) 및 제22.4조(정보의 공개)를 저해함이 없이,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그 공개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국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에의 접근을 허락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가. 법 집행을 저해할 경우,

나. 공식 정보의 취급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에 반하는 경우, 또는

다.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모든 보호정보는 다음 절차에 따라 공개로부터 보호된다.

가. 라호를 조건으로, 분쟁당사자들과 중재판정부는 정보를 제공한 분쟁당사자가 나호에 따라 명백하게 지정한 경우 보호정보를 비분쟁당사국이나 대중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나. 특정 정보가 보호정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분쟁당사자는 그 정보가 중재판정부에 제출될 때 그 정보를 명백하게 지정한다.

다. 분쟁당사자는 보호정보라고 주장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 그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편집본을 제출한다. 편집본만이 제1항에 따라 비분쟁당사국에게 제공되고 일반에 공개된다.

라. 중재판정부는 보호정보라고 주장되는 정보의 지정에 관하여 분쟁당사자가 제기하는 이의에 대하여 결정한다. 중재판정부가 그러한 정보가 적정하게 지정되지 아니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출한 분쟁당사자는

1) 그러한 정보를 포함하는 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2) 중재판정부의 결정 및 다호에 따라 지정을 정정하여 완전본과 편집본을 다시 제출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이 중 어떠한 경우든, 다른 쪽 분쟁당사자는, 필요한 때에는 언제나, 그 정보를 처음 제출한 분쟁당사자가 라호1목에 따라 철회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또는 그 정보를 처음 제출한 분쟁당사자의 라호2목에 따른 지정에 합치하게 정보를 재지정한 완전본과 편집본을 다시 제출한다. 그리고

마. 분쟁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는 정보가 적정하게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서면결정을 내리는 것을 검토한다. 그러한 요청 후 60일 이내에 공동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는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어떠한 결정 또는 판정도 그 결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가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경우, 비분쟁당사국이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서면진술을 공동위원회에 그 기간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계속 유효하게 된다.

5.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피청구국이 자국법에 의하여 공개되도록 요구되는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제 11.22 조
준거법

1. 제3항을 조건으로, 청구가 제11.16조제1항가호1목가) 또는 제11.16조제1항나호1목가)에 따라 제기되는 때에는, 중재판정부는 이 협정과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에 따라 분쟁 중인 쟁점을 결정한다.

2. 제3항과 이 절의 그 밖의 규정을 조건으로, 청구가 제11.16조제1항가호1목나) 또는 제11.16조제1항가호1목다)나 제11.16조제1항나호1목나) 또는 제11.16조제1항나호1목다)에 따라 제기되는 때에는, 중재판정부는 다음을 적용한다.

가. 해당 투자인가 또는 투자계약에 명시된 법규칙, 또는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할 수 있는 바에 따라, 또는

나. 법규칙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달리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

1) 법의 충돌에 대한 규칙을 포함한 피청구국의 법,[43] 그리고

2)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

3. 제21.3조제3항다호에 따라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표명하는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모든 결정 또는 판정은 그 결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제 11.23 조
부속서의 해석

1.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조치가 부속서 I 또는 부속서 II에 규정된 유보항목의 범위 내에 있다고 피청구국이 항변으로서 주장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문제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해석을 요청한다. 공동위원회는 그 요청의 전달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1.3조제3항다호에 따라 이에 대한 해석을 표명하는 결정을 서면으로 중재판정부에 제출한다.

2. 제1항에 따라 내려진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결정 또는 판정은 그 결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가 60일 이내에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그 문제를 결정한다.

제 11.24 조
전문가 보고서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의하여 승인되는 경우 그 밖의 종류의 전문가 임명을 저해함이 없이, 중재판정부는 한쪽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분쟁당사자들이 거부하지 아니하는 한 자체 발의로,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절차에서 제기한 환경 · 보건 · 안전 또는 그 밖의 과학적 사안에 관한 사실문제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에 서면 보고하도록 1인 이상의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43] 이 호의 목적상, "피청구국의 법"이란 적정한 관할권을 가진 국내 법원 또는 재판소가 같은 사건에서 적용하였을 법을 말한다.

제 11.25 조
병합

1. 제11.16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청구가 별도로 중재에 제기되어 있고 그 청구들이 법 또는 사실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건 또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병합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조건에 따라 병합명령을 구할 수 있다.

2. 이 조에 따라 병합명령을 구하는 분쟁당사자는 서면으로 사무총장과 그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에게 요청을 송달하며, 그 요청에 다음을 명시한다.

가.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의 성명 및 주소

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

다. 명령을 구하는 근거

3. 사무총장이 제2항에 따라 요청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그 요청이 명백히 근거없다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설치된다.

4.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가. 청구인들의 합의로 임명되는 1인의 중재인

나. 피청구국에 의하여 임명되는 1인의 중재인, 그리고

다. 사무총장에 의하여 임명되는 의장중재인. 다만, 의장중재인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5. 사무총장이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피청구국 또는 청구인들이 제4항에 따라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아직 임명되지 아니한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피청구국이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분쟁당사국의 국민을 임명하고, 청구인들이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비분쟁당사국의 국민을 임명한다.

6.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제11.16조제1항에 따라 중재에 제기된 둘 이상의 청구들이 법 또는 사실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건 또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청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그리고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명령에 의하여

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나. 중재판정부가 하나 이상의 청구에 대한 판정이 다른 청구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경우에, 그 하나 이상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심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또는

다. 제11.19조에 따라 이전에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여 판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만,

1) 이전에 그 중재판정부의 분쟁당사자가 아니었던 청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구인들을 위한 중재인이 제4항가호 및 제5항에 따라 임명된다는 점을 제외하고, 그 중재판정부는 원래의 구성원들로 재구성된다. 그리고

2) 그 중재판정부는 이전의 심리가 반복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7. 이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설치된 경우, 제11.16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였고 제2항에 따른 요청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인은 제6항에 따른 명령에 자신이 포함되도록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에 다음을 명시한다.

가.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

다. 명령을 구하는 근거

청구인은 자신의 요청 사본을 사무총장에게 전달한다.

8.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절에 의하여 수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절차를 수행한다.

9. 제11.19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조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시받은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 청구 또는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10. 어느 한쪽 분쟁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제11.19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이미 그 절차를 중단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중재판정부의 절차를 보류하도록 제6항에 따른 자신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명령할 수 있다.

제 11.26 조
판정

1.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에 최종적인 패소판정을 내리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다음만을 별도로 또는 조합하여 판정할 수 있다.

가.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 그리고

나. 재산의 원상회복. 이 경우 판정은 피청구국이 원상회복 대신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2. 중재판정부는 또한 이 절과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비용 및 변호사 보수를 판정할 수 있다.

3. 제1항을 조건으로, 제11.16조제1항나호에 따라 청구가 중재에 제기된 경우,

가. 재산의 원상회복 판정은 원상회복이 기업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을 규정한다.

나.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 판정은 그 합계가 기업에 지불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그리고

다. 판정은 그 판정이 적용가능한 국내법에 따른 구제에 있어 어떠한 인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저해함이 없이 이루어짐을 규정한다.

4. 중재판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정할 수 없다.

5.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내려진 판정은 분쟁당사자들 간 그리고 그 특정 사안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6. 제7항과 잠정 판정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재심 절차를 조건으로, 분쟁당사자는 지체없이 판정을 지키고 준수한다.

7. 분쟁당사자는 다음 시점까지 최종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따른 최종 판정의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120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2) 수정 또는 취소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그리고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또는 제11.16조제3항라호에 따라 선택된 규칙에 따른 최종판정의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파기 또는 취소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2) 법원이 판정에 대한 수정·파기 또는 취소 신청을 기각하거나 인용하였고 더 이상의 불복청구가 없을 때

8.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의 판정의 집행을 규정한다.

9. 피청구국이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비분쟁당사국의 요청의 전달이 있을 때, 제20.8조(패널의 설치)에 따른 패널이 설치된다. 요청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에서 다음을 구할 수 있다.

가.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것이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한다는 결정, 그리고

나. 제20.11조(패널 보고서)에 따라 피청구국이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도록 하는 권고

10. 분쟁당사자는 절차가 제9항에 따라 취하여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있다.

11.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청구는 뉴욕협약 제1조의 목적상 상업적 관계 또는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11.27 조
문서의 송달

당사국에 대한 통보와 그 밖의 문서는 부속서 11-아에서 그 당사국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로 송달된다.

제 3 절
정의

제 11.28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센터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를 말한다.

청구인이란 다른 쪽 당사국과의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를 말한다.

분쟁당사자들이란 청구인과 피청구국을 말한다.

분쟁당사국이란 제2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에 따라 청구가 제기된 당사국을 말한다.

기업이란 제1.4조(정의)에 정의된 기업과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과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그 곳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당사국의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이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국에 의한 절차행정을 위한 추가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이란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국가와 타방 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투자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한다.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업

나. 주식, 증권 및 기업에 대한 그 밖의 형태의 지분 참여

다. 채권, 회사채, 그 밖의 채무증서와 대부[44]

라. 선물, 옵션과 그 밖의 파생상품

마. 완성품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여, 수익배분과 그 밖의 유사한 계약

바. 지식재산권

사. 면허, 인가, 허가와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는 이와 유사한 권리[45,46], 그리고

아. 그 밖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저당권·유치권 및 질권과 같은 관련 재산권[47]

이 협정의 목적상, 상품 및 서비스의 상업적 판매로부터만 발생하는 지급청구권은 그것이 투자의 특징을 가진 대부가 아닌 한 투자가 아니다.

---

[44] 채권, 회사채 및 장기어음과 같은 일부 형태의 부채는 투자의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높은 반면, 그 밖의 형태의 부채는 그러한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낮다.

[45] 특정한 유형의 면허, 인가,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그러한 수단의 성격을 가지는 한도에서, 양여를 포함한다)이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당사국 법에 따라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성격과 범위 같은 그러한 요소에 달려있다.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면허, 인가, 허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수단 중에는 국내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앞 내용은 면허, 인가, 허가 또는 이외 유사한 수단과 연계된 자산이 투자의 특징을 가지는지 여부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46] "투자" 라는 용어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에 들어있는 명령 또는 판결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장점유, 시장접근, 기대이득, 그리고 이익획득의 기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가 아니다.

투자계약이란 한쪽 당사국의 국가당국[48]과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서면계약[49]으로서 적용대상투자 또는 투자자가 서면계약 그 자체 이외의 적용대상투자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데 의존하고, 적용대상투자 또는 투자자에게 다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당국이 통제하는 천연자원에 관하여, 탐사·채취·정제·운송·유통 또는 매각을 위한 것과 같은 권리

나. 발전 또는 배전, 용수 처리 또는 분배, 또는 통신과 같이 당사국을 대신하여 공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또는

다. 정부의 배타적 또는 현저한 이용과 혜택을 위한 것이 아닌, 도로·교량·운하·댐 또는 배관의 건설과 같은, 기반시설사업을 수행할 권리

투자인가란 당사국의 외국인투자당국이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 인가를 말한다.[50,51]

비당사국의 투자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투자하고자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투자자로서, 어느 쪽 당사국의 투자자도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투자하고자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한쪽 당사국 또는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이중국적자인 국민은 그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간주된다.

뉴욕협약이란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체결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을 말한다.

비분쟁당사국이란 투자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국을 말한다.

보호정보란 비밀 영업정보 또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특별취급을 받거나 달리 공개로부터 보호되는 정보를 말한다.

피청구국이란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당사국을 말한다.

사무총장이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그리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이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말한다.

---

[48] 이 정의의 목적상, 국가당국이란 중앙정부 당국을 말한다.

[49] "서면계약"은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체결한 계약을 지칭한다. 이는 권리 및 의무의 교환을 창설하고 양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 당사국이 단지 자국의 규제 권한으로 내리는 허가, 면허, 또는 인가와 같은 행정 또는 사법 당국의 일방적 행위, 또는 독자적인 포고령, 명령 또는 판결, 그리고

나. 행정적 또는 사법적 동의 포고령 또는 명령은 서면계약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5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쟁법과 같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취하는 조치는 이 정의 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1975년 「외국인 인수합병법」을 포함한 호주의 외국인 투자 정책 하에 재무부장관이 내린 결정은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한국의 경우,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서명일 현재 한국이 투자인가를 부여하는 외국인투자당국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부속서 11-가
국제관습법

양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11.5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대로의 "국제관습법"이 국가가 법적 의무감으로부터 따르는 일반적이고 일관된 국가관행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제11.5조에 대하여,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은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국제관습법상 원칙을 지칭한다.

부속서 11-나
수용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1.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는, 그것이 투자 내에서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수용을 구성할 수 없다.

2. 제11.7조제1항은 두 가지 상황을 다룬다. 첫 번째는 직접수용으로서,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되거나 달리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이다.

3. 제11.7조제1항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4.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의 사실 상황하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요구한다.

   가.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한다.

   나. 정부 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52] 그리고

   다.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53]

[5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에 근거한 기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관련 부문에 있어 정부규제의 성격 및 정도에 대한 고려를 포함할 수 있다.

[53] 한국의 경우, 관련 고려사항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과 같은 불균형적인 부담을 투자자가 지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부속서 11-다
송금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의 경우 당사국이 지급 및 자본 이동에 대하여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임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심각한 국제수지 또는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양 당사국 간 지급 및 자본 이동이 해당 당사국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의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언급된 조치는

가. 1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한쪽 당사국이 그러한 조치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그 당사국은 사전에 어떠한 연장안의 이행에 관하여도 다른 쪽 당사국과 조율할 것이다.

나. 「국제통화기금협정」과 합치한다.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상업적·경제적 및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한다.

라. 제1항에 기술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마. 일시적이며, 제1항에 기술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제된다.

바. 몰수적이지 아니한다.

사. 다른 쪽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통지된다.

아. 내국민 대우에 기초하여 적용된다.

자. 다른 쪽 당사국이 비당사국만큼 유리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한다.

차.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카. 그러한 조치의 부과가 「국제통화기금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한, 경상거래에 대한 지급 또는 송금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타.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5.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및 환경과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54,55,56]

[5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5항의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 목록은 포괄적이지 아니하다.

[5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리고 제5항의 범위를 제한함 없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규제 행위는 의약품, 진단제, 백신, 의료기기, 보건관련 보조기구 및 기기, 그리고 혈액과 혈액제제에 관한 규제, 공급 및 급여를 포함한다.

[56] 한국의 경우, 부동산 가격 안정화(예를 들어,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11-라

호주 거주 요건의 예시 목록[57]

분야	요건
모든 분야	상장기업 이사 중 최소 2인은 호주에 통상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전문직 서비스: 회계, 감사 및 회계장부 정리 서비스	법인의 지분을 가진 파트너 중 최소 1인은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연구개발 서비스: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심리학자에 대한 영주 요건(서부 호주)
해상운송 서비스: 국제 운송(화물 및 승객)	2010년 「경쟁 및 소비자보호법」 제10부는, 호주로 출입하는 국제 정기선 화물 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원양화물선이 호주에 개별적으로 거주(그러나 호주 시민일 필요는 없음)하며 제10부의 목적상 원양화물선 대리인으로 원양 화물선에 의하여 지명된 자에 의하여 항상 대리되도록 요구한다.

[57] 이 표는 투명성 목적으로만 제공된다. 이 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상 호주의 약속,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교섭에 따른 2005년 5월 호주의 수정 서비스 양허안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부속서 11-마

양자 간 상소 메커니즘의 가능성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년 이내에, 양 당사국은 그들이 상소기구 또는 유사한 메커니즘을 설치한 후 개시되는 중재에서 제11.26조에 따라 내려진 판정을 재심하기 위한 양자간 상소기구 또는 유사한 메커니즘을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부속서 11-사
외국인 투자 정책

호주의 외국인 투자 정책상 심사 대상이 되는 투자에 대한 거부 여부 또는 명령이나 조건 부과 여부에 관한 호주의 결정은 제2절의 분쟁 해결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다.

부속서 11-바
중재 청구 제기

한국

1. 제11.1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나 기업이 각각 한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 소송 절차에서 제1절상의 의무 위반을 주장한 경우, 호주의 투자자는

   가. 제11.16조제1항가호에 따라 자기자신을 위하여, 또는

   나. 제11.16조제1항나호에 따라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한국 기업을 대신하여

한국이 제1절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청구를 제2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없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호주의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한국의 기업이 한국이 제1절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한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에서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선택은 최종적이며, 그 투자자는 그 이후에 자기자신을 위하여 또는 그 기업을 대신하여 제2절에 따른 중재에서 그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

부속서 11-아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한국

제2절에 따른 분쟁에서의 통보 및 그 밖의 문서는 다음 주소로 배달하여 한국에 송달된다.

대한민국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국제법무과

호주

제2절에 따른 분쟁에서의 통보 및 그 밖의 문서는 다음 주소로 배달하여 호주에 송달된다.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RG Casey Building
John McEwen Crescent
Barton ACT 0221 Australia

부속서 11-자
과세 및 수용

과세조치가 특정한 사실 상황에서 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하며, 그러한 조사는 부속서 11-나에 열거된 요소들과다음의 고려사항들을 포함하여 투자에 관련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가. 세금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새로운 과세조치의 단순한 도입이나 투자에 대하여 당사국 내에 둘 이상의 관할권에서의 과세조치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 정책·원칙 및 관행에 합치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특히, 과세조치의 기피 또는 회피를 막기 위한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 특정 국적의 투자자 또는 특정한 납세자를 겨냥한 과세조치와는 반대로,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할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라. 투자가 이루어진 때에 과세조치가 이미 시행 중이었고 그 조치에 대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였다면, 그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2014년 4월 8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한민국 서울

윤상직 장관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금일자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협정")의 서명과 관련하여 본인은 이 협정의 제11장(투자)에 관한 교섭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호주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양 당사국은 제11장(투자)의 제2절에 따라 개시된 중재에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와 국가 간 중재에 대한 투명성 규칙(유엔문서 A/CN.9/783)("UNCITRAL 투명성 규칙")의 향후 적용에 대해 이 협정 발효 후 12개월 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UNCITRAL 투명성 규칙은 제11장(투자)의 제2절에 따라 개시된 중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앤드류 롭

2014년 4월 8일

앤드류 롭
통상투자부 장관
국회의사당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캔버라 2600

앤드류 롭 장관 귀하,

금일자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협정")의 서명과 관련하여 본인은 이 협정의 제11장(투자)에 관한 교섭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호주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양 당사국은 제11장(투자)의 제2절에 따라 개시된 중재에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와 국가 간 중재에 대한 투명성 규칙(유엔문서 A/CN.9/783)("UNCITRAL 투명성 규칙")의 향후 적용에 대해 이 협정 발효 후 12개월 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UNCITRAL 투명성 규칙은 제11장(투자)의 제2절에 따라 개시된 중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윤 상 직

제 12 장
정부조달

제 12.1 조
적용범위

장의 적용

1. 이 장은 적용대상조달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목적상, "적용대상조달"이란 상품, 서비스 또는 양자 모두에 대한 다음의 정부조달을 말한다.

   가. 구매, 임차, 할부구매, 매입선택권을 갖거나 갖지 아니하는 리스,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을 포함하여 모든 계약적 수단에 의한 것

   나. 이 조에 따라 추정된 조달금액이 부속서 12-가에 명시된 관련 기준가와 같거나 초과하는 가액의 것

   다. 다.조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

   라. 라.이 장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

   마. 마.부속서 12-가에 명시된 조건에 따르는 것

3.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의 조달기관이 그 당사국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상품 및 서비스를 조달하는 것, 또는 당사국의 조달기관과 그 당사국의 지역 또는 지방정부 간 상품 및 서비스를 조달하는 것

   나. 비계약적 합의 또는 무상교부, 융자, 지분참여, 재정적 유인, 보조금, 보증 그리고 협력협정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

   다. 해외원조 제공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조달

   라. 연구 및 개발 서비스의 조달

   마. 조달 당사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소비를 위한 조달 당사국 영역 밖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의 조달

   바. 공공 고용 계약

   사. 군대의 주둔과 관련되거나 사업 서명국의 공동 이행과 관련된 국제 협정의 특정 절차 또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조달, 또는 국제기구의 특정 절차 또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조달, 또는 국제 공여, 차관 또는 그 밖의 지원으로 자금이 충당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원조의 제공이 이 장과 불합치하는 조건에 따르도록 하는 한도에서의 조달

   아. 당사국의 조달기관이 아닌 인에게서 받은 무상공여 또는 후원금으로 자금이 충당되는 조달

   자. 건설서비스 조달을 위한 약정의 일부가 아닌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의 부동산이나 그에 대한 권리의 취득 또는 임차

   차. 퇴직 연금 충당 재원으로서의 목적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이 보유한 준비금에 관한 금융 자문 및 자산 관리 서비스의 조달, 또는

   카. 재무 대리 또는 예탁 서비스, 규제되는 금융기관의 청산 및 관리 서비스, 또는 융자 및 정부채권, 어음, 파생상품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을 포함한 공적 부채의 판매, 상환 및 배분과 관련된 서비스의 조달 또는 취득

계약가액 산정

4. 적용대상조달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조달가액을 추산할 때, 조달기관은

   가. 그 조달에서 규정될 수 있는 할증료, 요금, 수수료, 이자 및 그 밖의 수입 흐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보수를 고려하며, 그 조달이 선택 조항의 가능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선택 구매를 포함한 최대 총 조달가액을 고려한다. 그리고

   나. 제 6 항을 저해함이 없이, 조달이 동시에 또는 주어진 기간 동안 하나 이상의 공급자에게 낙찰되는 계약으로서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수행되는 경우, 그 조달의 전 기간에 걸친 최대 총 조달가액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5. 조달기관에 의한 가액 산정방법의 선택은 이 장의 적용을 피할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조달 요건도 그러한 목적으로 분할되지 아니한다.

6. 상품 또는 서비스의 리스, 임차 또는 할부구매 조달의 경우, 또는 총액이 명시되지 아니한 조달의 경우, 가액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확정기간 계약의 경우

      1) 계약기간이 12개월 이하일 경우, 계약기간에 대한 최대 총 추정가액, 또는

      2) 계약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추정 잔존가액을 포함한 최대 총 추정가액

   나. 계약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 월 추정분할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그리고

   다. 계약이 확정기간 계약인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호가 적용된다.

7. 이 장에 따라 달리 제외되지 아니하는 한, 조달의 전체 기간에 걸친 조달의 최대 총 추정가액이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 그 조달은 적용대상조달이 된다.

8. 양 당사국은 2001년 8월 8일자 대한민국의 국방부와 호주의 국방부 간 방위산업 협력 양해각서를, 그 모든 개정사항 또는 연장을 포함하여, 인정하고 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이 양해각서상 수립된 혜택 및 책임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임을 인식한다.

제 12.2 조
예외

1. 그러한 조치가 같은 조건하에 있는 당사국 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중도덕이나 질서를 유지하거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라. 장애인, 자선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또는 재소자 노동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는 조치

2. 양 당사국은 제1항나호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양해한다.

3. 제22.2조(필수적 안보)에 더하여,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국가안보 또는 국방 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정부 조달에 관련된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2.3 조
일반 원칙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

1. 적용대상조달에 관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각 당사국과 그 조달기관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과 조달기관이 국내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적용대상조달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대하여, 당사국 또는 그 조달기관은,

가. 외국인과의 제휴 또는 외국인 소유의 정도를 근거로, 국내에 설립된 한 공급자를 국내에 설립된 다른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아니한다. 또는

나.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가 특정한 조달을 위하여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라는 점에 근거하여 그 공급자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조달에 특정되지 아니하는 조치

3. 제1항과 제2항은 관세 및 수입에 부과되거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그 밖의 모든 종류의 부과금, 그러한 관세 및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법, 또는 제한과 절차를 포함한 그 밖의 수입 규정에 관한 조치 및 적용대상조달에 관한 조치 이외의 서비스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응구매의 금지

4. 적용대상조달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당사국 또는 그 조달기관은 대응구매를 모색, 고려, 부과, 또는 집행하지 아니한다.

원산지 규정

5. 각 당사국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적용대상조달에 대하여 자국이 통상적인 무역거래 과정에서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하는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다.

조달의 수행 및 입찰 절차

6.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조달의 수행에 있어 자국의 조달기관이 이 장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7. 조달기관은 공개, 선택 또는 제한입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8. 어떠한 조달기관도 이 장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조달의 어떠한 단계에서든, 그 조달을 준비, 설계 또는 달리 구성하거나 분할하지 아니한다.

9. 제 22.4 조(정보의 공개)에 더하여,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그러한 공개가 공급자 간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당사국 또는 그 조달기관에게 어떠한 인에 의하여 제공된 비밀 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인의 승인 없이 공개, 제공, 또는 이에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2.4 조
공고의 공표

조달의 공고

1. 공개입찰 절차에서, 조달기관은 입찰을 위하여 설정된 전체 기간 동안 널리 유포되고 다른 쪽 당사국의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적 또는 서면 매체에 관심있는 공급자들이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공고(이하 "조달공고" 라 한다)를 공표한다.

2. 선택입찰 절차에서 조달기관이 참가 신청을 권유하거나 공급자들에게 적용대상조달에의 관심을 표시하도록 요청하는 공고를 공표하는 경우, 그 공고는 널리 유포되고 다른 쪽 당사국의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적 또는 서면 매체에 공표된다.

3.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조달 공고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조달기관의 명칭, 주소 및 조달기관에 접촉하여 그 조달에 관한 모든 관련 서류를 입수하는데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나. 그 조달에 대한 기술 및 모든 참가조건

다. 적절한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의 인도 기간, 그리고

라. 입찰서 제출 주소 및 기한

계획된 조달의 공고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달기관이 매 회계연도 조달 계획에 관한 공고를 매 회계연도 전에 또는 매 회계연도마다 가능한 한 조기에 공표하도록 권장한다. 그 공고는, 최소한 각 계획된 조달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관련 입찰 절차의 예상되는 개시 시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12.5 조
기한

1. 조달기관은 조달의 성격 및 복잡성을 고려하여, 공급자가 적용대상조달에의 입찰참가 신청서 또는 요청서를 제출하고 응찰서를 준비 및 제출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는 입찰 기한을 규정한다.

2. 조달기관은 참여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공통의 마감시한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요건은 다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가. 조달 과정 동안 공급자에게 제공된 정보를 수정할 필요에 따른 결과로 조달기관이 자격심사 또는 입찰 절차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또는

나. 협상이 종료되고 공급자가 신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3.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서 접수 마감일자는 조달 공고의 공표일부터, 또는 선택입찰의 경우,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입찰서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25일 이상이다.

4. 조달기관은 다음의 경우 입찰서 접수 기한을 10일 이상이 되게 단축할 수 있다.

가. 조달기관이 제12.4조제4항에 따른 계획된 조달의 공고를 포함하여 개별 공고를 적어도 30일 이상 12개월 이하로 미리 공표하였고, 그러한 개별 공고가 조달에 대한 기술, 입찰서 또는 적절한 경우 조달참가신청서의 제출 시한, 그리고 조달 관련 서류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를 포함하는 경우

나. 반복적인 성격의 조달에 대한 공고를 2차 또는 후속 공표하는 경우

다. 조달기관에 의하여 적절하게 증명된 긴급사태로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입찰 기간이 실행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또는

라. 상업 시장에서 관례적으로 가능하지 아니한 사소한 변경뿐 아니라 상업 시장에서 관례적인 변경을 가한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여, 조달기관이 비정부적 목적에서 비정부적 구매자에게 판매되었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공된, 그리고 비정부적 구매자에 의하여 비정부적 목적에서 관례적으로 구매되고 사용된, 상업적 상품 또는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

제 12.6 조
참가 조건

1. 당사국과 그 조달기관은 잠재적 공급자의 해당 계약 이행 능력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적용대상조달에의 모든 참가 조건을 제한한다.

2. 공급자가 참가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당사국과 그 조달기관은,

가. 해당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의 영역 안팎 모두에서의 공급자의 영업활동에 기초하여 그 공급자의 역량을 평가한다.

나. 조달기관이 사전에 공고나 입찰 서류에 명시한 조건에만 근거하여 결정한다.

다. 공급자가 조달에 참가하거나 계약에 낙찰되기 위해서는 그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조달기관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계약을 종전에 낙찰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그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전 작업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조달 요건 충족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전의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에 근거한 공급자의 배제를 막지 아니한다.

가. 파산

나. 허위 신고

다. 종전 계약의 실질적인 요건 또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하거나 지속적인 흠결

라. 중대한 범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관한 최종 판결

마. 공급자의 상업상 무결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업무상 부정 행위 또는 작위나 부작위, 또는

바. 세금 미납

제 12.7 조
공급자의 등록 및 자격심사

1. 당사국 또는 조달기관이 공급자가 적용대상조달에 참가하도록 허락되기 전에 등록 또는 사전자격심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 또는 조달기관은 공급자에게 등록 또는 사전 자격심사에 지원하도록 요청하는 공지가 관심있는 공급자가 등록 또는 자격심사 절차를 개시하고, 조달 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립가능한 한도에서 등록 또는 자격심사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 내에 공표되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 또는 조달기관이 관심있는 공급자들에게 해당 명부에 포함될 것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공고를 연간 발행하거나 달리 전자적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하는 경우, 그 당사국 또는 조달기관은 유자격자 명부를 설립할 수 있다. 그 공고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유자격자 명부가 사용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또는 이들의 범주에 대한 설명

나. 공급자들이 충족해야 할 참가 조건과 조달기관 또는 그 밖의 정부기관이 공급자의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할 방법

다. 조달기관 또는 그 밖의 정부기관의 명칭과 주소, 그리고 해당 조달기관에 접촉하여 유자격자 명부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입수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정보, 그리고

라. 유자격자 명부 등재를 위한 신청서의 제출 마감 시한

3. 유자격자 명부를 유지하는 당사국 또는 조달기관은 참가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공급자를 합리적인 단기간 내에 그 명부에 포함시킨다.

4. 공급자가 적용대상조달에의 참가 또는 제 2 항에 언급된 명부에의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그러한 공급자에게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즉시 통보한다.

제 12.8 조
기술 규격

1. 조달기관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거나 적합성 평가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다.

2. 조달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술규격을 규정함에 있어 조달기관은, 적절한 경우,

가. 디자인이나 외형적 특성보다는 성능 및 기능적 요건을 기준으로 기술 규격을 규정한다. 그리고

나.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기술 규격을 그러한 국제표준에 기초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기술규정, 인정된 국가표준 또는 건축법규에 기초한다.

3. 조달기관은, 조달의 요건을 충분히 정확하게 또는 명료하게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상표 또는 상호, 특허, 저작권, 디자인, 형식, 특정 원산지, 생산자 또는 공급자를 요구하거나 인용하는 기술규격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달기관은 입찰서류에 "또는 동등한 것" 과 같은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4. 조달기관은 특정 적용대상조달을 위한 기술규격의 준비 또는 채택에 사용될 수 있는 조언을 해당 조달에 상업적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인으로부터, 경쟁을 미리 배제하는 효과를 갖게 될 방식으로 구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한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조달기관은,

가. 특정 적용대상조달을 위한 기술 규격을 개발하는 데 있어 시장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또는

나. 디자인 또는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에 관계하였던 공급자가 그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조달에 참여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달기관은 그 공급자에게 다른 공급자보다 불공정한 우대를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달기관은 천연자원의 보전을 증진하거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 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할 수 있다.

제 12.9 조
입찰 서류

1. 조달기관은 적용대상조달에 참여하는 모든 공급자에게 공급자가 적합한 입찰서를 준비 및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입찰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한다.

2. 조달 공고에 이미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서류는 다음 사항에 대한 완전한 기술을 포함한다.

가.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범위 및 알려진 경우 수량을 비롯해 기술 규격, 적합성 평가 인증, 계획서, 설계도 또는 사용설명서 자료를 포함한 충족해야 하는 모든 요건을 포함한 해당 조달

나. 공급자가 제출해야 하는 재정적 보증, 정보 및 서류를 포함한 모든 참가 조건

다. 계약 낙찰에서 고려될 모든 기준

라. 공개 개찰이 있을 경우, 개찰 일시 및 장소, 그리고

마. 입찰 평가와 관련 있는 그 밖의 모든 조건

3. 어떠한 당사국이나 그 조달기관도 하나의 잠재적 공급자 또는 잠재적 공급자 그룹에게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우대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는 방식으로 특정 적용대상조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4. 입찰 과정에 참가하는 공급자가 제출한 관련 정보에 대한 모든 합리적인 요청에 대하여 조달기관은 신속하게 응답한다.

5. 적용대상조달의 진행 과정동안, 조달기관이 입찰에 참가하는 공급자에게 제공한 공고나 입찰서류에서 규정한 기준 또는 기술 요건을 수정하거나, 공고 또는 입찰서류를 개정 또는 재발행하는 경우, 해당 조달기관은 그러한 모든 수정사항이나 개정 또는 재발행된 그러한 모든 공고나 입찰서류를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전달한다.

가. 알려진 경우, 정보의 개정 시점에 참가중인 모든 공급자들에게,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경우, 원래 정보가 제공되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할 것, 그리고

나. 그러한 공급자가 입찰서를 적절하게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할만한 충분한 시간 내에 전달할 것

제 12.10 조
선택입찰 절차

선택입찰 절차상 가장 효과적인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달기관은 조달 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에 합치하는 한 최대 다수의 국내 공급자와 다른 쪽 당사국 공급자들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요청한다. 조달기관은 입찰절차에 참여할 공급자를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선택한다.

제 12.11 조
제한입찰

1. 조달기관이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를 차별하는 방식으로 이 조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제2항을 조건으로, 조달기관은 제한 입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조달기관이 제한 입찰을 적용하는 경우, 조달의 성격에 따라 해당 조달기관은 제12.4조부터 제12.10조까지 그리고, 제12.12조제1항 및 제12.12조제3항부터 제12.12조제8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2. 조달기관은 다음의 상황에서만 제한 입찰을 이용할 수 있다.

가. 사전 공고, 입찰 참여 또는 입찰 요청에 대하여

1) 입찰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입찰참가를 요청하는 공급자가 없는 경우

2) 입찰서류상 필수적 요건에 부합하는 입찰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입찰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공급자가 없는 경우, 또는

4) 제출된 입찰서가 담합에 의한 것일 경우

이면서 그 조달기관이 실질적으로 조달의 필수적 요건을 수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예술품에 대하여, 또는 특허나 저작권 또는 재산권적 정보와 같은 독점적인 권리의 보호와 관련된 이유에서, 또는 기술적인 이유로 경쟁이 부재하고, 특정 공급자에 의해서만 상품 또는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대안 또는 대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교체부품 · 확장, 또는 기존 장비 · 소프트웨어 · 서비스 또는 설비의 유지 서비스를 위하여 의도된 원 공급자나 그 승인을 얻은 대리인의 추가 납품에 있어, 공급자의 변경이 조달기관으로 하여금 기존 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설비와의 상호호환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조달하도록 강제하게 될 경우

라. 원자재 시장에서 구매되는 상품의 경우

마. 조사, 실험, 연구 또는 독자 개발을 위한 특정 계약을 목적으로, 조달기관의 요청으로 한시적 이용을 위하여 의도되었거나 그 계약과정에서 조달기관의 요청으로 개발된, 시제품 또는 최초 상품 또는 서비스를 조달기관이 조달하는 경우. 최초 상품 또는 서비스의 독자 개발은 현장시험 결과를 포함하고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수용할만한 품질 기준으로 대량 생산 또는 공급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한적 생산이나 공급을 포함할 수 있다.

바. 기초 사업에 부합하는 유사한 건설 서비스의 반복으로 구성된 신규 건설 서비스의 경우로, 그 기초 사업의 최초 계약이 이 장에 따른 공개 또는 선택입찰 방식의 이용에 따라 낙찰되었으며, 해당 조달기관이 최초 건설 서비스에 관한 조달 공고시 그러한 신규 건설 서비스의 계약 낙찰에는 제한 입찰 절차가 이용될 수 있다고 적시한 경우

사. 이례적인 처분, 요청하지 아니한 혁신적 제의, 청산, 파산 또는 법정관리와 같이 매우 단기간에만 발생하는 예외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구매하는 경우. 다만, 일반 공급자로부터의 통상적인 구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 엄밀히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조달기관이 예측하지 못한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극도로 긴급한 상황을 이유로 공개입찰 또는 선택입찰 절차에 의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적시에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자.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디자인 경연대회 당선자에게 낙찰되는 계약의 경우

1) 경연대회가 이 장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조직된 경우, 그리고

2) 당선자에게 디자인 계약이 낙찰되게 할 목적으로 경연대회가 독립적인 심사인단에 의하여 판정을 받는 경우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낙찰된 각 계약에 대하여, 조달기관은 다음을 포함하는 서면 보고서를 준비한다.

가. 조달기관의 명칭

나. 조달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액과 종류, 그리고

다. 공개입찰 또는 선택입찰 절차가 아닌 절차의 이용을 정당화하는 제1항 및 제2항에 기술된 상황 및 조건을 적시하는 문안

제 12.12 조
입찰서의 접수와 개찰 및 낙찰

1. 조달기관은 조달 과정의 공정성 및 공평성을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모든 입찰서를 접수하고 개찰한다.

2. 조달기관은 그 조달기관의 당사국 법에 따라 모든 입찰서를 비밀로 취급한다. 특히, 조달기관은 특정 공급자에게 공급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조달기관은 입찰서의 접수가 오로지 해당 조달기관의 잘못된 취급 때문에 지체된 경우, 입찰서 접수에 명시된 시각 후에 접수된 입찰서의 공급자를 불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4. 조달기관이 입찰서의 개찰과 낙찰 사이에 공급자에게 의도하지 아니한 형식상 오류를 정정할 기회를 주는 경우, 그 조달기관은 참가하는 모든 공급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한다.

5. 조달기관은 입찰서가 낙찰 대상으로 고려되기 위하여 입찰서가 서면으로 제출될 것과, 개찰 시 입찰서류의 필수 요건에 부합할 것을 요구한다.

6. 조달기관이 낙찰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참가조건을 충족하고 공고 및 입찰서류에 명시된 요건 및 평가기준에 따라 가장 유리하거나 금액 대비 가치가 가장 높다고 조달기관이 판정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공급자에게 계약을 낙찰한다.

7. 조달기관이 제출된 그 밖의 입찰서의 가격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해당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지 및 계약 조건을 충족시킬 능력이 있는지를 그 공급자와 검증할 수 있다.

8. 조달기관은 이 장의 요건을 우회충족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조달을 취소하거나 낙찰된 계약을 종료 또는 수정하지 아니한다.

제 12.13 조
낙찰 후 정보

1. 조달기관은 계약의 낙찰 후 60 일 이내에 공식적으로 지정된 공표수단에 그 낙찰에 관한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는 공고를 공표한다.

가. 조달기관의 명칭 및 주소

나. 조달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기술

다. 낙찰일 또는 계약일

라. 계약금액

마. 낙찰자의 이름 및 주소, 그리고

바. 이용된 조달 방식

2. 조달기관은 입찰서를 제출한 공급자에게 낙찰 결정을 신속히 통지한다. 조달기관은 요청이 있는 경우, 낙찰되지 아니한 공급자에게 그 조달기관이 해당 공급자의 입찰서를 선정하지 아니한 이유를 제공한다.

3. 조달기관은 계약 낙찰일 후 최소 3년의 기간동안 제12.11조제3항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를 포함하여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달의 수행 관련 기록과 보고서를 유지한다.

제 12.14 조
조달과정의 무결성 보장

각 당사국은 다음을 제재하기 위한 형사 또는 행정 처벌이 존속하도록 보장한다.

가. 조달공무원의 조달기능 수행에 있어서 작위 또는 부작위의 대가로, 그 조달공무원 또는 다른 인을 위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혜택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구하거나 수령하는 그 당사국의 조달공무원

나. 조달공무원의 조달기능 수행에 있어서의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대가로, 그 조달공무원 또는 다른 인을 위하여, 그 당사국의 조달공무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혜택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의하거나 공여하는 모든 인, 그리고

다. 영업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조달공무원이 조달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삼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 외국 조달공무원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외국 조달공무원에게 직접적이든 또는 중개인을 통하여든 관계없이 부당한 금전적 또는 그 밖의 이익을 고의적으로 제의·약속 또는 제공하는 모든 인

제 12.15 조
국내 심의 절차

1. 공급자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이해관계를 가졌던 적용대상조달의 맥락에서 이 장을 이행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적용되지 못했다는 한쪽 당사국의 공급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 조달기관의 당사국은 그 공급자가 해당 조달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그러한 이의제기의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장려한다. 그러한 경우 조달기관은 그러한 모든 이의제기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고 공평하게 고려하며, 그러한 모든 이의제기가 해당 공급자의 진행 중인 또는 향후의 조달 참가나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 절차상 시정 조치를 구할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비차별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다른 쪽 상대국의 공급자가 적용대상조달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이의제기를 조달기관의 당사국 법과 규정에 따라 접수하고 검토할, 조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최소한 하나의 공평한 행정 또는 사법 당국을 유지한다.

3. 각 당사국은 이의제기 메커니즘에 관한 정보를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한다.

제 12.16 조
적용범위의 정정 및 수정

1.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자국의 적용범위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정 전에 존재한 적용범위에 상응하는 적용범위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수용가능한 보상조정을 동시에 제안한다.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이 통보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다른 쪽 당사국이 통보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반대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이 장에 따른 자국의 적용범위에 순전히 형식적인 성격의 정정을 가하거나, 부속서 12-가에 언급된 자국의 정부 조달 양허안에 사소한 개정을 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정 또는 사소한 개정을 하는 당사국은 보상조정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3. 한쪽 당사국이 효과적으로 자신의 통제 또는 영향력을 제거한 조달기관을 수정제안의 대상으로 한다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상황에서는, 그 한쪽 당사국은 보상조정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정부의 통제 또는 영향력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다는 데 대하여 양 당사국이 합의하지 아니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국은 정부 통제 또는 영향력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 장에 따른 조달기관의 지속된 적용범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정보 또는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2.17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계약이란 물리적 기간시설, 공장, 건물, 설비 또는 그 밖의 정부소유 사업의 신축 또는 재건을 규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계약적 약정을 공급자가 이행하는 대가로서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사업의 임시 소유권 또는 이를 통제하고 운영하며 사용에 대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정된 기간 동안 부여하는 모든 계약적 약정을 말한다.

참가조건이란 조달에 참가하기 위한 등록, 자격심사 및 그 밖의 선행조건을 말한다.

서면으로란 독해 가능하고, 모사 가능하며 사후에 통지 가능한 모든 문자 또는 숫자로 된 표현을 말한다. 이는 전자적으로 전송되고 저장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제한 입찰 절차란 제 12.11 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입찰 절차를 말한다.

유자격자 명부란 당사국 또는 조달기관이 그 명부에 등재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결정하여 그 당사국 또는 조달기관이 두 번 이상 활용하고자 하는 공급자들의 명부를 말한다.

대응구매란 국산 재료의 사용, 기술 면허, 투자, 대응 무역 및 이와 유사한 행위 또는 요건과 같이 국내 개발을 장려하거나 당사국의 국제수지계정을 개선하는 모든 조건 또는 약속을 말한다.

공개 입찰 절차란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달 방법을 말한다.

조달기관은 부속서 12-가의 제 1 절, 제 2 절 또는 제 3 절에 기재된 기관을 말한다.

선택입찰 절차란 조달기관이 입찰 자격이 있거나 참가 조건을 충족하는 공급자들에 한정하여 입찰서 제출을 권유하는 조달 방법을 말한다.

서비스란 달리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건설서비스를 포함한다.

공급자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인을 말한다. 그리고

기술규격이란 다음의 입찰 요건을 말한다.

가. 품질, 성능, 안전도 및 용적을 포함한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을 위한 과정 및 방법을 규정한 것, 또는

나. 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다루는 것

부속서 12-가
정부조달

제 1 절
중앙정부기관

이 장은 조달가액이 제 12.1 조제 4 항부터 제 7 항까지에 따라 다음 금액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산정되는 경우 이 절의 각 당사국 양허표에 기재된 중앙정부기관에 적용된다.

가. 상품 및 서비스의 조달에 대하여
130,000 SDR

나. 건설서비스의 조달에 대하여
5,000,000 SDR

한국 양허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문화재청
방위사업청(주해3)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해양경찰청(주해5)
방송통신위원회
관세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병무청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방부(주해3)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방방재청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주해5)
국세청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조달청(주해4)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대검찰청

한국 양허표에 대한 주해

1. 상기 중앙정부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그들의 "보조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을 포함한다.

2. 이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모든 할당분 및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제22.2조(필수적 안보) 규정에 따른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조건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구매에 대하여, 이 장은 다음의 군급번호 분류품목에 대해서만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제5절 및 제6절에 기재된 서비스 및 건설 서비스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및 국방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분야에 대하여만 적용될 것이다.

군급번호 2510	차량의 운전실, 몸체 및 프레임 구조 구성품
군급번호 2520	차량 동력전달 장치 구성품
군급번호 2540	차량용 가구 및 부수품
군급번호 2590	그 밖의 차량 구성품
군급번호 2610	항공기용이 아닌 공기식 타이어와 튜브
군급번호 291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연료계통 구성품
군급번호 292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전기계통 구성품
군급번호 293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냉각계통 구성품
군급번호 294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공기 및 기름 필터, 여과기 및 정화기
군급번호 2990	항공기용이 아닌 그 밖의 엔진 부수품
군급번호 3020	기어, 활차, 톱니바퀴 및 전달체인
군급번호 3416	선반
군급번호 3417	절삭기
군급번호 3510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장비
군급번호 4110	냉장장비
군급번호 4230	오염제거 및 주입장비
군급번호 4520	공간 난방장치 및 가정용 온수기
군급번호 4940	그 밖의 유지장비 및 수리점용 특수장비
군급번호 5120	날이 없고 전력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수공구
군급번호 5410	사전조립 및 이동식 건축물
군급번호 5530	합판 및 단판
군급번호 5660	울타리재료, 울타리 및 문
군급번호 5945	계전기 및 원통코일
군급번호 5965	헤드세트, 송수화기,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군급번호 5985	안테나, 도파관 및 관련 장비
군급번호 5995	전선, 코드 및 전선조립품: 통신장비
군급번호 6220	차량용 전기조명 및 설비
군급번호 6505	약품 및 생물제제
군급번호 6840	살충소독제
군급번호 6850	각종 특수화학물
군급번호 7310	식품조리, 제빵 및 급식장비
군급번호 7320	주방설비 및 기구
군급번호 7330	주방용품 및 용구
군급번호 7350	식탁용 식기
군급번호 7360	음식조리 및 급식용 세트, 키트, 장비 및 모듈
군급번호 7530	문방구 및 기록용지
군급번호 7920	비, 솔, 걸레 및 스폰지
군급번호 7930	청소 및 광택용 화합물 및 조제품
군급번호 8110	드럼 및 깡통
군급번호 9150	기름 및 윤활유: 절삭용, 윤활용 및 유압용
군급번호 9310	종이와 판지

4. 조달청: 이 장은 이 절에 기재된 기관을 위하여 조달청에 의하여 수행되는 조달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2절 및 제3절에 기재된 기관을 위한 조달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기관에 대한 적용범위 및 기준가가 적용된다.

5.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이 장은 제12.2조에 규정된 대로,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조달은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호주 양허표(주해 1 및 주해 2)

소원법 심사위원회
검찰청
통계청
국제 농업 연구 호주 센터
범죄위원회
관세 및 국경보호부
선거위원회
연방경찰국

범죄학연구소
법 개정 위원회
감사원
금융관리소(AOFM)
공공서비스위원회
방사선 보호 및 원자력 안전국(ARPANSA)
연구협의회
국세청
무역위원회
통화거래 보고 및 분석센터(AUSTRAC)
교통안전국
기상청
연방보조금위원회
호주퇴직연기금
범죄수사국
군수물자처(주해 3)
농림부
통신부
국방부(주해 3)
교육부
고용부
환경부
재정부
외교통상부
보건부
의회지원부
인적서비스부
이민 및 국경보호부
산업부
산업기반시설 및 지역개발부
의회부
총리내각부
상원부
사회서비스부
재무부
보훈부
공정근로위원회
가정법원 및 연방순회법원
연방법원
광물자원연구소
세금감찰관
특허청
이민재심법원 및 난민재심법원
국가공문서기록보관소
국가혈액청
국가수도국
국가경쟁력위원회
정보보안감찰청
회계기준위원회
연방민원조사청
공공소추국
공정노동민원조사관
정보보안감찰청
총독비서실
의회상담청
구의회
생산성위원회
전문서비스 검사소
왕립조폐국
공정노동국
선원보호, 재활 및 보상위원회
근로여성평등기회국

호주 양허표에 대한 주해

1. 이 장은 이 양허표에 기재된 해당 기관에만 적용된다.
2. 이 장은 이 절에 기재된 모든 기관의 자동차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국방부 및 군수물자처

가. 이 장은 제12.2조(예외)에 의거해 국방부 및 군수물자처에 의한 다음 상품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략적으로 상응하는 군급번호
무기	군급번호 10
사격통제장비	군급번호 12
탄약 및 폭발물	군급번호 13
유도탄	군급번호 14
항공기 및 항공기 기체구성품	군급번호 15
항공기 구성품 및 부수품	군급번호 16
항공기 발사, 착륙 및 지상취급용 장비	군급번호 17
우주비행체	군급번호

	18
함선, 소형선, 폰툰 및 부선거	군급번호 19
함선 및 해상장비	군급번호 20
지면효과식 운반체, 자동차, 트레일러 및 사이클	군급번호 23
엔진, 터빈 및 구성품	군급번호 28
엔진 부수품	군급번호 29
베어링	군급번호 31
정수 및 하수처리 장비	군급번호 46
밸브	군급번호 48
유지 및 수리점용 장비	군급번호 49
사전조립식 구조물 및 비계	군급번호 54
통신, 탐지 및 방사능 간섭 장비	군급번호 58
전기 및 전자장비 구성품	군급번호 59
광섬유 재료, 구성품, 조립품 및 부수품	군급번호 60
전선, 전력 및 배전 장비	군급번호 61
알람, 신호 및 보안감지 시스템	군급번호 63
기구 및 실험용 장비	군급번호 66
특수 금속	번호 없음

주해: 상품이 이 주해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상기 좌측 열에 기재된 설명에 따라 결정된다. 미 군급번호는 참조 목적으로만 제공된다. *(호주의 분류는 미 군급번호 분류와 개략적으로 상응하며 미 군급번호의 전체 목록은 http://www.fbo.gov 참조)*

나. 호주의 경우, 이 장은 제12.2조에 의거, 공통분류체계 및 WTO 분류체계 MTN.GNS/W/120에 상술된 다음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통분류체계의 전체 목록은 http://www.sice.oas.org/trade/nafta/chap-105.asp 참조*)

1) 디자인, 개발, 통합, 시험, 평가, 유지, 보수, 수정, 재건축 및 군사 시스템 및 장비의 설치 (미 품목 서비스 코드 A 및 J의 해당 부분과 개략적으로 상응)

2) 정부소유 시설의 운영 (미 품목 서비스 코드 M과 개략적으로 상응)

3) 우주 서비스 (AR, B4 & V3)

4) 해외 군병력을 지원하는 서비스

다. 이 장은 국방정보원, 군사신호이사회 또는 국방영상지구공간원에 의하거나 이들 기관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조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제12.3조에 관해, 호주 정부는 제12.2조에 따라 호주산업역량강화계획 및 그 승계 계획과 정책을 유지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 2 절
지방정부기관

1. 이 장은 조달가액이 제 12.1 조제 4 항부터 제 7 항까지에 따라 다음 금액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산정되는 경우 이 절의 각 당사국 양허표에 기재된 지방정부기관에 적용된다.

가. 상품 및 서비스의 조달에 대하여
한국의 경우, 200,000 SDR, 그리고
호주의 경우, 355,000 SDR

나. 건설서비스의 조달에 대하여
한국의 경우, 15,000,000 SDR, 그리고
호주의 경우, 5,000,000 SDR

2. 이 장은 이 양허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한국 양허표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한국 양허표에 대한 주해

1. 상기 지방정부기관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그들의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이 부속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기관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이 장은 「자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어떠한 할당분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호주 양허표

호주수도특별구(ACT)(주해1)

도박 및 경주위원회
보험국
호주수도특별구 교통국
감사원
준주 총리 및 재무부
상무 및 노동부
주정부지역서비스부
문화시설부
경제개발부
교육훈련부
환경 및 지속가능한발전부
보건부
주택부
독립경쟁 및 규제위원회
사법 및 지역 안전부
법률상담지원청
민원조사청
국토 및 지역자치서비스부

1. 상기 호주수도특별구에 명시된 기관들에 대하여, 정부조달에 관한 장은 보건 및 복지서비스, 교육 서비스, 공공시설 서비스 또는 자동차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뉴사우스웨일즈주(NSW)(주해1 및 주해2)

감사원
아동 및 청년위원회
지역사회관계위원회
법무부
교육 및 지역사회부
가족 및 지역사회부
재무부
기획 및 기반시설부
총리내각부
무역 및 투자, 지역 기반시설 및 서비스부
소방국
보건고충처리위원회
정보 및 사생활 위원회(정보 및 사생활위원회에 대하여, 이 장은 사생활 위원회의 기능과 관계된 조달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법률지원위원회
경찰 및 긴급서비스부
보건부
차량사고청
범죄위원회
선거위원회
민원조사청
농촌지역소방지원국
식품청
농촌지원청
학습위원회
검찰청
환경보호청
경찰기강위원회
공공서비스위원회
긴급서비스
시드니항 연안관리청
시드니올림픽공원관리청
교통청(교통청에 대하여, 이 장은 교통건설청 및 지방철도 기반시설청의 기능과 관련한 조달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금융서비스부
산재보험청

1. 상기 뉴사우스웨일즈에 명시된 기관들에 대하여, 이 장은 보건 및 복지서비스, 교육 서비스, 또는 자동차의 조달은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2. 상기 뉴사우스웨일즈에 명시된 기관들에 대하여, 이 장은 비적용대상 기관들을 대신하여 적용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노던테리토리주(NT)(주해1)

원주민지역보호청
감사청

호주중앙병원네트워크
예술 및 박물관부
사법부
사업부
준주총리부
교정서비스부
보건부
주택부
국토자원관리부
국토, 기획 및 환경부
의회부
지방정부부
광물 및 에너지부
1 차산업 및 수산부
지역개발 및 여성정책부
스포츠 및 오락부
재무 및 금융부
건강 및 지역서비스고충처리위원회
국토발전협회
박물관 및 미술관 위원회
선거위원회
긴급상황지원국
고용훈련청
소방 및 구조지원국
허가위원회
공공고용지원청
민원조사청
공원 및 야생동물보호위원회
경찰청
경주위원회
보수 간이 재판부
스트레로우연구센터위원회
노던테리토리 병원 네트워크
관광청
공공산업위원회
사업장보건청

1. 상기 노던테리토리주에 명시된 기관들에 대하여, 이 장은 노던테리토리주정부와 찰스다윈대학 간 동반자협정에 따라 찰스다윈대학을 대신하는 할당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퀸즈랜드주(주해1 및 주해2)

2008 년 「공공서비스법」 제 14 절에 따라 부로 선포된 기관
공공서비스위원회
공공신뢰청

1. 상기 퀸즈랜드주에 명시된 기관들에 대하여, 이 장은 다음과 같은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비적용대상 기관들을 대신하는 적용대상 기관들에 의한 조달

나. 보건, 교육, 훈련 및/또는 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 또는 부의 일부가 수행하는 조달, 그리고

다. 보건 서비스, 교육 서비스, 훈련 서비스, 예술 서비스, 복지 서비스, 정부 광고 및 자동차의 조달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SA) (주해 1)

원주민정책 및 조화국
문화부
사법부
감사원
지방소방지원국
법원행정처
방위
지역사회 및 사회통합부
교정서비스부
교육 및 아동개발부
환경, 수자원 및 천연자원부
고등교육, 고용, 과학 및 기술부
보건 및 노인부
통상경제발전부
기획, 교통 및 기반시설부
주총리내각부
1 차산업 및 지역부
재무 및 금융부
선거위원회
환경보호청
도박청
법률서비스위원회
주정부 및 지방정부관계청
주의회
소방 및 긴급상황지원위원회
도심소방지원국
경찰청
관광위원회
주 긴급서비스
조달청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직업훈련원

1. 상기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에 명시된 기관들에 대하여 이 장은 보건 및 복지 서비스, 교육 서비스, 광고서비스 혹은 자동차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태즈매니아주(주해1)

경제발전, 관광 및 예술부

교육부
보건후생부
사회기반시설, 에너지 및 자원부
법무부
경찰 및 긴급상황관리부
주총리내각부
1차산업, 공원, 수자원 및 환경부
재무 및 금융부
하원
상원
의회
검찰청
주총독청
민원조사청
감사청
보건기구 – 북
보건기구 – 북서
보건기구 – 남

1. 상기 태즈메니아에 명시된 기관들에 대하여, 이 장은 보건 및 복지서비스, 교육 서비스 또는 광고서비스의 조달은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빅토리아주(주해1 및 주해2)

지속성장감찰관
교육 및 유아개발부
환경 및 1차산업부
보건부
인적서비스부
법무부
주총리내각부
주개발, 비즈니스 및 혁신부
교통, 국토개발 및 지역기반시설부
재무 및 금융부
반부패위원회
경찰청장실(빅토리아 경찰청)
아동 및 청년 위원회
기본서비스지원위원회
소방청
법률지원위원실
민원조사청
개인정보감찰관
검찰청
도로안전카메라감찰관실
택시서비스위원회
도박 및 주류 규제위원회
도박기금청
주정부지원청
감사청
선거위원회
기회균등 및 인권위원회
감찰청

1. 상기 빅토리아에 명시된 기관들에 대하여, 이 장은 자동차의 조달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2. 상기 빅토리아에 명시된 기관들에 대하여, 이 장은 비적용대상 기관들을 대신한 적용대상 기관들에 의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식물원 및 공원청
부패 및 범죄위원회
지방고교호스텔청
법무부
아동보호부
지역사회부
농림식품부
상무부
교정서비스부
문화 및 예술부
교육부
직업훈련 및 노동력개발부
교육서비스부
환경보전부
재무부
소방 및 긴급상황지원부
수산부
보건부
주택부
원주민정책부
지방정부부
광산 및 원유부
계획부
주총리내각부
경주, 도박 및 주류부
지역개발 및 토지부
등록 및 산업관계위원회부
주개발부
스포츠오락부
교육 및 인력개발부
재무부
수자원부
장애인지원위원회
평등위원회
가스코인개발위원회
골드필즈에스페란스지역개발위원회
총독실

그레이트서던지역개발위원회
문화유산심의회
킴벌리지역개발위원회
법개혁위원회
하원
상원
도로국
중서부개발위원회
서호주광물에너지연구소
호주내셔널트러스트
감사원
검찰청
정보위원회
보호감찰지원청
의회행정조사위원회실
의회지원부
필지역개발위원회
필바라지역개발위원회
공공분야위원회
공공교통청
로트네스트섬관리청
농촌사업개발협회
보수 및 수당심판청
학제 및 표준청
소상공인개발협회
남서지역개발위원회
주립도서관
스완강보호국
경찰청
선거위원회
국토정보청
개발위원회
서호주스포츠센터 트러스트
관광위원회
위트벨트개발위원회
동물원관리청

제 3 절
그 밖의 적용대상기관

이 장은 조달가액이 제 12.1 조제 4 항부터 제 7 항까지에 따라 다음 금액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산정되는 경우, 이 절의 각 당사국 양허표에 기재된 그 밖의 적용대상기관에 적용된다.

가. 상품의 조달에 대하여
450,000 SDR

나. 건설서비스의 조달에 대하여
15,000,000 SDR

한국 양허표

기업은행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HS 제 8504 호, 제 8535 호, 제 8537 호 및 제 8544 호 범주에 해당되는 상품의 구매는 제외)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광물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 양허표에 대한 주해

1. 이 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어떠한 할당분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호주 양허표(주해 1, 주해 2 및 주해 3)

통신매체청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
재정보안청
수산업관리청
인권위원회
해양과학연구소
해양안전청
살충제 및 수의약품청
규제자문청
증권 및 투자위원회
공무원산업재해보상기구
연방과학및산업연구기구
기업 및 시장자문위원회
국립공원청
그레이트베리어리프해양공원청

작업환경안전국
시드니항 보호국
관광청

호주 양허표에 대한 주해

1. 이 장은 이 양허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2. 이 절에 명시된 기관에 대하여, 이 장은 이 부속서의 제4절 및 제6절의 호주 양허표에 명시된 상품 및 건설서비스의 조달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3. 이 절에 명시된 기관에 대하여, 이 장은 자동차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4 절
상품

1. 이 장은 이 부속서를 포함하여 이 장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제1절, 제2절 및 제3절에 명시된 기관에 의하여 조달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2. 이 장은 혈장분획제제를 포함하여 혈액과 혈액 제품의 조달을 적용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 5 절
서비스

이 장은 이 부속서를 포함하여 이 장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제 1 절과 제 2 절에 기재된 기관에 의하여 조달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한국 양허표

WTO/MTN.GNS/W/120 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다음의 서비스는 WTO 보편적 서비스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그 밖의 모든 서비스는 제외)

GNS/W/120	CPC	설명
1.A.b.	862	회계·감사 및 부기 서비스
1.A.c.	863	세무서비스
1.A.d.	8671	건축설계서비스
1.A.e.	8672	엔지니어링서비스
1.A.f.	8673	통합엔지니어링서비스
1.A.g.	8674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
1.B.a.	841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관련 자문서비스
1.B.b.	842	소프트웨어 실행서비스
1.B.c.	843	데이터 처리 서비스
1.B.d.	844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1.B.e.	845	컴퓨터를 포함하는 사무기계류 및 기기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서비스
1.E.a.	83103	선박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1.E.b.	83104	항공기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1.E.c.	83101, 83105*	그 밖의 운송기기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서비스(15인승 미만의 승합차에 한함)
1.E.d.	83106, 83108, 83109	그 밖의 기계류 및 기기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83107	건설 기계 및 기기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1.F.a.	8711, 8719	광고대행서비스
1.F.b.	864	시장조사 및 대중여론 조사 서비스
1.F.c.	865	경영컨설팅서비스
1.F.d.	86601	프로젝트 경영 서비스
1.F.e.	86761*	성분 및 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대기, 수질, 소음 수준 및 진동 수준에 대한 검사, 시험 및 분석 서비스만을 포함)
	86764	기술적 진단서비스
1.F.f.	8811*, 8812*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서비스
	8814*	임업 부수 서비스(항공에 의한 산불진화 및 병해충방제 서비스를 제외)
1.F.g.	882*	어업 관련 컨설팅 서비스
1.F.h.	883*	광업 관련 컨설팅 서비스
1.F.m.	86751, 86752	과학 및 기술 관련 자문서비스
1.F.n.	633, 8861 8862, 8863 8864, 8865 8866	장비의 유지 및 보수
1.F.p.	875	사진서비스
1.F.q.	876	포장서비스
1.F.r.	88442*	인쇄(스크린 인쇄, 그라비어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
1.F.s.	87909*	속기서비스 국제회의 대행 서비스
1.F.t.	87905	번역 및 통역 서비스
2.C.j.	7523*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2.C.k.	7523*	전자적 데이터 교환
2.C.l.	7523*	축적 및 전송, 축적 및 검색을 포함한 고도 부가가치 모사전송 서비스
2.C.m.	–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2.C.n.	843*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처리(거래 처리 포함)
2.D.a.	96112*, 96113*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제작 및 유통 서비스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그러한 서비스는 제외)
2.D.e.	–	음반 제작 및 유통 서비스(음성 녹음)

GNS/W/120	CPC	설명
6.A.	9401*	폐수 처리 서비스(산업폐수 수집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
6.B.	9402*	산업폐기물 처리 서비스(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
6.D.	9404*, 9405*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저감 서비스(건설업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
	9406*, 9409*	환경분야 시험 및 평가 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만 해당)
11.A.b.	7212*	국제운송(연안운송 제외)
11.A.d.	8868*	선박의 유지 및 보수
11.F.b.	71233*	컨테이너화물운송(연안운송 제외)
11.H.c.	748*	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 해운대리업서비스 – 해상화물운송주선서비스 – 해운중개서비스 – 항공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 통관서비스
11.I.	–	철도화물운송주선

한국 양허표에 대한 주해

별표(*)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초기 약속에 대한 대한민국의 조건부 수정양허안에 기재된 세부사항의 "일부분"을 가리킨다.

호주 양허표

이 장은 다음의 조달을 적용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가. 혈장분획 서비스

나. 정부 광고 서비스

다. 법률 서비스

라. 통신

마. 교육 서비스

바. 금융 서비스

사. 운송 서비스, 또는

아. 보건복지 서비스

제 6 절
건설서비스

이 부속서를 포함해 이 장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은 제 1 절, 제 2 절 및 제 3 절에 열거된 조달기관에 의하여 조달되는 모든 건설서비스에 적용된다.

한국 양허표

1. 이 장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은 제1절부터 제3절까지에 열거된 조달기관에 의하여 조달되는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체제(CPC) 제51대분류상의 모든 건설서비스 조달에 적용된다.

2. 이 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어떠한 할당분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호주 양허표

제 12.6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목적상 호주는 건축 및 건설서비스의 조달에의 참여 조건으로 국가 건설 산업 관행 법규집 및 중앙 및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관련 이행 지침, 그리고 그 승계 정책 및 지침의 준수를 요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호주는 한국의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호주가 자국의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 7 절
일반 주해

여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 양허표의 다음 일반 주해는 이 부속서의 모든 절을 포함하여 이 장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한국 양허표

1. 이 장은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항에 대한 조달은 이 협정에 따른 적용대상이 아니다.

호주 양허표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모든 형태의 특혜

나.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다. 원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조치, 그리고

라. 원주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진출을 위한 조치

제 8 절
기준가

일반사항

1. 제 1 절, 제 2 절 및 제 3 절에 규정된 기준가는 2 년 간격으로 조정되며 각 조정사항은 1 월에 효력이 발생한다.

2. 각 당사국은 국제통화기금이 월별 "국제금융통계" 에 공표하는 환산 비율을 사용하여 기준가액을 자국 통화로 계산하여 환산한다. 제 3 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율은 조정된 기준가가 유효하게 되기 전 해의 10 월 1 일 또는 11 월 1 일부터 역산한 2 년 동안의 SDR 에 대한 각국 통화의 일일 가치 평균이 될 것이다.

3. 지방정부기관의 기준가에 대하여 호주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기준으로 호주와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의 부속서 제 15-A 제 8 절에 기재된 SDR 금액의 호주달러 환산법을 제 2 항에 규정된 SDR 금액에 적용할 수 있다.

4. 당사국은 이 절의 적용 대상인 조정된 기준가의 산출액을 다음에 따라 반올림할 수 있다.

가. 한국의 경우, 상품 및 서비스에 있어서는 1백만원까지 그리고 건설서비스에 있어서는 1천만원까지, 그리고

나. 호주의 경우, 호주달러 1천달러까지

5. 각 당사국은 각각 자국의 통화로 표시된 현행 기준가를 이 협정의 발효 직후에, 그리고 그 이후로는 각각 자국의 통화로 표시된 조정 기준가를 시의적절하게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6. 양 당사국은 SDR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주요한 변화가 이 장의 적용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 협의한다.

제 13 장
지식재산권

제 13.1 조
일반 규정

의무의 성격 및 적용범위

1.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이러한 권리들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들이 그 자체로 적법한 무역에 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법령 체계와 관행 내에서 이 장의 조항들을 이행하는 적절한 방법을 자유로이 결정한다.

국제 의무의 준수

3.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관장하는 협정들, 그리고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지식재산 관련 그 밖의 다자 협정들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 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필요한 국내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요건으로, 2000년 6월1일 제네바에서 체결된 「특허법 조약」과 2006년 3월 27일 싱가포르에서 체결된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

5.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을 자국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더 광범위한 보호는 이 장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내국민 대우

6.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에 관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이 체약당사국인 또는 체약당사국이 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자 협정들에 규정된 예외들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그러한 지식재산권과 그러한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혜택의 보호[58] 및 향유에 대하여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59]에게 부여한다.

7.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송달을 위한 주소지를 지정하거나 자국 영역에서 대리인을 임명하도록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국의 사법 및 행정 절차와 관련하여 제6항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이탈은

가. 이 장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 및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제6항은 지식재산권의 획득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주관하에 체결된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당사국인 다자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존 대상물 및 이전 행위에 대한 협정의 적용

9. 제13.5조제7항을 포함하여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미 존재하여, 보호가 주장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보호되고 있거나, 이 장에 따른 보호 기준을 충족하거나 이후에 충족하게 되는 모든 대상물에 대하여 의무를 발생시킨다.

10. 제13.5조제7항을 포함하여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보호가 주장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미 공공의 영역에 속하게 된 대상물에 관한 보호를 회복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11.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투명성

12. 제19.1조(공표)에 더하여,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 또는 집행에 관한 모든 법·규정 및 절차가 명문화되고 공표되거나, 공표가 실행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 및 권리자가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국의 언어로 공개하도록 보장한다.

[58] 제6항의 목적상, "보호"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구체적으로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이용가능성·취득·범위·유지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그리고,
나. 제13.5조제9항에 규정된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 금지와 제13.5조제10항에 규정된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권리 및 의무

[59] 제6항, 제7항 및 제13.7조제1항의 목적상, 당사국의 "국민"은 관련 권리에 대하여 제3항에 언급된 협정들에 규정된 그 권리의 보호를 위한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게 될 그 당사국의 모든 인(제1.4조(정의)에서 정의된 대로)을 포함한다.

제 13.2 조
상표

상표 보호

1. 어떠한 당사국도 등록의 요건으로 상표가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 또는 냄새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하지도 아니한다.[60]

2. 각 당사국은 상표가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지리적 표시가 상표로서 보호될 자격이 있음을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모든 제3자가 소유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표지 사용의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표권의 예외

4. 각 당사국은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유명 상표

5. 어떠한 당사국도 어떠한 상표가 유명 상표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상표가 그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6. 1883년 3월20일 파리에서 체결된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 제6조의2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명 상표[61]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준용된다. 다만,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그 상표의 사용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표권자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며, 상표권자의 이익이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7. 각 당사국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혼동을 야기하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 또는 취소하고 상표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상표 출원 및 등록

8. 각 당사국은

[60] 당사국은 도표로 표현될 수 있는 상표의 충분한 묘사를 요구할 수 있다.

[61] 상표가 유명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의 명성이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통상적으로 다루는 일반 공중의 분야를 넘어설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가. 상표 등록의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전자적으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출원인은 그러한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적인 등록 거절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불복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상표등록제도를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상표 출원 및 등록에 관해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전자적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나. 이해당사자가 상표 출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다.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상표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해당사자가 상표에 대한 권리에 행정적 또는 사법적 수단, 또는 두 수단 모두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제공한다.

9. 각 당사국은 상표의 최초 등록 및 각 등록 갱신이 10년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규정한다.

상표 사용권의 등록

10. 어떠한 당사국도 사용권의 유효성을 입증하거나,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또는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상표 사용권의 등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13.3 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각자의 법, 규정 및 정책을 조건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그러한 보호가 양 당사국 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증진과 합치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협조한다. 그러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지식재산권의 집행을 담당하는 관련 기관 간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정보 교환

나. 집행기관, 교육기관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 이해가 있는 그 밖의 기관을 포함하여 각각의 기관 간 접촉 및 협력의 증진

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안에 있어 양 당사국의 제3국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의 공유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과 관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협력 제안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 13.4 조
인터넷상 도메인이름

1. 각 당사국은 국가코드최상위도메인(이하 "ccTLD"라 한다)의 관리에 있어서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에서 수립된 원칙에 기초하여, 적절한 분쟁해결절차가 규정되도록 요구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ccTLD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자국법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에 관한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온라인상 공중의 접근이 제공되도록 요구한다.

제 13.5 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1. 각 당사국은, 저작자 · 실연자 ·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62]가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을 포함한다)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그의 저작물 · 실연[63] · 음반 및 방송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64]를 가지도록 규정한다.[65]

2. 각 당사국은 저작자 ·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66]의 이전을 통하여, 그의 저작물 · 실연 및 음반의 원본과 복제물[67]을 공중에게 이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 규정된 저작자 · 실연자 ·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의 향유와 행사에 있어 어떤 형식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권리의 서열관계

4. 한편으로는 저작자의 권리, 또 다른 편으로는 실연자 ·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 간에 서열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음반 또는 방송에 체화된 저작물의 저작자와 그 음반 또는 방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실연자 ·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의 허락이 모두 필요한 경우에, 실연자 ·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의 허락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저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지는 않음을 규정한다. 마찬가지로, 각 당사국은 음반 또는 방송에 체화된 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과 그 음반 또는 방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실연자 ·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의 허락이 모두 필요한 경우에, 저작자의 허락이 또한

---

[62] 이 장의 목적상,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는 모든 권리승계인을 포함한다.

[63] 이 장의 목적상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실연"이란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음반에 고정된 실연을 말한다.

[64] 이 장의 목적상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는 배타적 권리를 지칭한다.

[65] 각 당사국은 제1항에서 기술된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그 저작물 · 실연 · 음반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제1항에서 기술된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가 이전 문장에서 기술된 대로 한정되는 한,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 또는 예외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66]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권리자의 허락과 함께 그의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원본 또는 복제물의 최초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의 이전 이후 이 권리의 소진에 적용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을 결정하는 당사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7] 이 항의 배포권의 적용대상인 "복제물"과 "원본과 복제물"이란 표현은 유형물로 유포될 수 있는 고정된 복제물만을 지칭한다.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실연자·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지는 않음을 규정한다.

보호 기간

5. 각 당사국은 저작물(사진 저작물을 포함한다)·실연 또는 음반의 보호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을 규정한다.

가. 자연인의 수명에 기초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 이상이다. 그리고

나. 자연인의 수명 이외의 것에 기초하는 경우, 그 기간은

1)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이 최초로 허락되어 발행한 연도 말부터 70년 이상이다. 또는

2)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창작으로부터 50년 이내에 그러한 허락된 발행을 하지 못한 경우,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이 창작된 연도 말부터 70년 이상이다.

6. 각 당사국은 방송 보호 기간을 처음 방송이 된 이후로부터 50년 이상으로 규정한다.

7. 1886년 9월 9일에 베른에서 체결된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이하 "베른 협약"이라 한다) 제18조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14.6조를 이 조와 제13.6조 및 제13.7조상의 대상물·권리 및 의무에 준용한다.

8. 각 당사국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방송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보유한 인이 다음을 하도록 규정한다.

가. 그 권리를 계약에 의하여 자유롭고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나. 저작물·실연·음반 및 방송의 창작의 바탕이 되는 고용계약을 포함한 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혜택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다.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보호

9. 각 당사국은 다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가. 관련인이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행하는, 보호되는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모든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

나. 다음의 장치·상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공중에게 제의, 제공 또는 달리 밀거래하거나, 다음의 서비스를 공중에게 제의하거나 제공하는 것

1) 모든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홍보·광고 또는 판매되는 것

2) 모든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이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 의미가 있는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또는

3) 모든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고안·제작되거나 기능하는 것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10. 각 당사국은 고의로 다음의 행위를 하는 인으로부터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가. 권한 없이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또는

나.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저작물·저작물의 복사물 또는 이 장에서 보호되는 그 밖의 대상물을 권한 없이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하여 수입, 방송·공중전달하거나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

다만, 그러한 인이 그렇게 함으로써 당사국의 법으로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하거나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은폐하는 것임을 알거나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형사 절차 및 처벌의 적용

11. 각 당사국은 또한, 비영리 도서관·아카이브·교육기관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방송기관 이외의 어떠한 인이라도 고의로 그리고 상업적 이익 또는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제9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행위 중의 어느 하나에 관여한 것으로 판명되는 때에 적용될 형사 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예외 및 제한

12. 각 당사국은 제9항 및 제10항을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자국법 및 제13.1조제3항에 언급된 관련 국제 협정들에 따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예외와 제한은 그러한 조치의 법적 보호의 적정성 그리고 제9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의 유효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예외

13. 이 조와 제13.6조 및 제13.7조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로 한정한다.[68]

---

[6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가 되는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다자 협정에 따라 배타적 권리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을 규정하는 양 당사국의 능력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14. 제13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텔레비전 신호(지상파, 케이블 또는 위성을 불문한다)를 신호 내용의 권리자와, 신호 그 자체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상에서 재송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69]

제 13.6 조
저작권

베른협약 제11조제1항제2호,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의3제1항제2호, 제14조제1항제2호, 그리고 제14조의2를 저해함이 없이, 각 당사국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저작자에게 그의 저작물을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제 13.7 조
저작인접권

1. 이 장에서 부여되는 권리에 대하여,

   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부여되는 권리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최초로 발행되거나 최초로 고정된[70] 실연과 음반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를 부여한다.[71] 그리고

   나. 방송사업자에 부여되는 권리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방송사업자의 본사가 다른 쪽 당사국에 위치해 있거나 방송이 다른 쪽 당사국에 위치하는 송신기로부터 송신된 경우 그 방송사업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한다.[72]

실연자의 권리

2. 각 당사국은 실연자에게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제공한다.

   가. 실연이 이미 방송된 실연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방송하고 공중에 전달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고정하는 것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

3. 각 당사국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제공한다.

   가. 실연자에 대하여, 실연자의 허가에 의하거나 이에 따른 배포 이후에도 음반에 고정된 실연의 원본과 복제물을 공중에게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것, 그리고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음반제작자의 허가에 의하거나 이에 따른 배포 이후에도 음반의 원본과 복제물을 공중에게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것, 그리고

   나. 실연자에 대해서는 음반에 고정된 그들의 실연이, 또는 음반제작자에 대해서는 그들의 음반이,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

4. 각 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적 이용에 대하여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단일의 공평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제공한다.

방송사업자의 권리

5. 각 당사국은 방송사업자에게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제공한다.

   가. 자신의 방송의 재방송,

   나. 자신의 방송의 고정, 그리고

   다. 고정물의 복제

제 13.8 조
특허

1. 각 당사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에 대하여도 특허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가능하여야만 한다. 이에 추가하여, 각 당사국은 알려진 물건의 새로운 용도 또는 사용방법에 대하여 특허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다.[73]

특허자격으로부터의 제외

2.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만을 특허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가.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보

[69] 제14항의 목적상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영역 밖으로부터 접근 불가능한 폐쇄적이고 한정된 가입자망을 통한 그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재송신은 인터넷상에서 재송신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70] 제13.7조의 목적상, "고정"은 마스터 테이프의 완성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71] 음반의 보호에 대하여, 당사국은 발행 기준 대신에 고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72] 방송의 보호에 대하여, 당사국은 방송사업자의 본사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위치해 있고 방송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위치하는 송신기로부터 송신된 경우에만 방송을 보호할 수 있다.

[73] 이 조의 목적상, 당사국은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라는 용어를 각각 "비자명성" 및 "유용성"과 동의어로 취급할 수 있다.

호하기 위하여 상업적 이용을 자국의 영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발명. 다만, 그러한 제외는 그 이용이 자국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나.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 치료방법 및 외과적 방법

특허권에 대한 제한적 예외

3. 각 당사국은 특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특허의 취소

4. 각 당사국은 특허 부여의 거절을 정당화하였을 근거에 의하여 특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당사국은 또한 사기, 허위진술 또는 불공정 행위가 특허를 취소하거나 특허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다.[74]

특허 유예기간

5. 각 당사국은 공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지에 포함된 정보를 무시한다.

가. 공지가 특허출원인에 의하여 실시 또는 승인되거나, 특허출원인으로부터 기인한 경우, 그리고

나. 공지가 출원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원일 전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6. 각 당사국은 특허 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하여 보정 · 정정 및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 1회 제공한다.

청구된 발명의 공개

7. 각 당사국은 청구된 발명의 개시(開示)가 출원일 현재 그 분야의 기술자에 의하여 과도한 실험 없이 그 발명이 이루어져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개시(開示)가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규정한다.

8.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그 분야의 기술에 숙련된 인에게, 출원인이 출원일 현재에 청구된 발명을 소유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전달되는 경우, 청구된 발명은 그 공개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된다. 그리고

나. 청구된 발명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유용성이 있는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하다.

9. 양 당사국은 검색 및 심사 업무의 상호 이용을 위한 진전의 기초로서 양국의 특허 기관간 협력을 위한 틀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13.9 조
지식재산권의 집행

일반적 의무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 명시된 의무는 지식재산권, 또는 언급된 경우 특정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제한된다.

2.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집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최종 사법결정 또는 행정판정이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정 또는 판정이 기초로 하는 관련 사실의 조사결과 및 사유 또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그러한 결정이나 판정이 공표[75]되거나, 공표가 실행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와 권리자가 이를 인지하게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중에게 자국의 언어로 달리 이용가능하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민사 · 행정 및 형사 제도에서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려는 자국의 노력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며, 여기에는 그러한 목적으로 그 당사국이 수집할 수 있는 모든 통계적 정보를 포함한다.[76]

4.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관련되는 민사 · 형사 그리고 적용가능할 경우 행정 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저작물 · 실연 · 음반 또는 방송의 저작자 · 제작자 · 실연자 · 방송사업자 또는 출판자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 성명이 표시되는 인을 그러한 저작물 · 실연 · 음반 또는 방송의 지정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자국법에 따라 그러한 대상물에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상표에 관련되는 민사 · 행정 및 형사 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가 유효하다는 반박가능한 추정을 규정한다. 특허에 관련되는 민사와 행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특허가 유효하다는 반박가능한 추정을 규정하고, 그러한 각각의 특허 청구항은 그 밖의 청구항의 유효성과는 독립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추정함을 규정한다.

민사 및 행정 절차와 구제

5. 각 당사국은 모든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를 권리자[77]에게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

[74] 한국의 경우, 특허법 제107조제1항1호에 따라 재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그 특허발명이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은 경우, 특허청장의 직권 또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특허를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호주의 경우, 특허가 반경쟁적인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그 당사국의 사법당국의 결정에 기초하여 특허를 철회하거나 혹은 취소할 수 있다.

[75] 각 당사국은 결정 또는 판정을 인터넷상 공개함으로써 이 항의 공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7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어떠한 것도 당사국이 홍보하여야 하는 정보의 공표 형태 · 형식 및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도되지 아니한다.

[77] 이 조의 목적상, "권리자"는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진 연합 또는 협회를 포함하고, 어느 지식재산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을 포함한다.

6.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민사 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은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다음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1) 침해의 결과로 권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손해배상, 또는

2)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 및 상표위조의 경우, 침해로 인하여 얻은 침해자의 이익. 이는 가호1목에 언급된 손해배상액으로 추정될 수 있다. 그리고

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국의 사법 당국은 특히 시장가격, 권장소비자가격 또는 권리자가 제시한 그 밖의 정당한 가치측정에 의하여 산정된 침해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

7. 각 당사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자국의 사법당국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 특허 침해 또는 상표 침해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시 패소자로 하여금 승소자에게 소송비용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 또는 고의적인 상표위조에 관한 절차에서는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더 나아가, 각 당사국은, 최소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자국의 사법당국이 특허 침해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시 패소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승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8.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와 상표 위조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사법당국이 침해행위와 관련된 침해혐의가 있는 상품·재료 및 도구의 압류 그리고 최소한 상표 위조에 대하여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서류의 압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9.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민사 사법절차에서,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판정된 상품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폐기된다.[78]

나. 자국의 사법당국은 그러한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상품의 제조 또는 생성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가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신속하게 폐기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추가 침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상거래 밖에서 처분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다. 위조된 상표 상품에 관하여는,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상품이 상거래로 반출되는 것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78] 당사국은, 특히 사법재량의 행사를 통하여, 이 호에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10.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 당국이 어떠한 측면으로든 침해에 연루된 인과 침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수단 또는 유통 경로에 관하여 침해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정보를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제공하고, 그 정보를 소송절차에서 권리자 또는 그 사법당국에게 제공하도록 침해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79]

1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 당국이 다음의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가. 적절한 경우, 그러한 사법당국이 내린 유효한 명령을 지키지 못한 민사 사법절차의 당사자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나. 소송절차에서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법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민사 사법절차의 당사자·그들의 변호인·전문가 또는 법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그 밖의 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12. 제13.5조제9항 및 제13.5조제10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최소한 다음을 명령 또는 판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가. 금지된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기 및 제품의 압류를 포함한 잠정조치

나.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시 금지된 행위에 관여한 당사자가 승소한 권리자에게 소송비용과 수수료 및 합리적인 변호사의 보수 지급, 그리고

다. 금지된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판정된 기기 및 제품의 폐기

13.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특히 침해 수입품의 상거래로의 반출과 그 수출을 금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침해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자국의 사법당국이 민사 사법절차의 당사자에게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주장되는 상품의 수출을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할 수 있다.

14. 당사국의 사법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기술전문가 또는 그 밖의 전문가를 임명하고 소송 당사자로 하여금 그러한 전문가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특히 그러한 비용이 수행된 업무의 양 및 성격에 밀접하게 관련되고 그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대체적 분쟁해결

15.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잠정조치

[7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은, 법조인의 특권이나 자기부죄금지특권과 같은 관습법상 또는 제정법상 특권과 충돌할 수 있는 정도까지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16. 각 당사국의 사법당국은 일방적 잠정조치의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한다.

17. 각 당사국은 잠정조치에 대하여 자국의 사법당국이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하였다고 충분한 정도의 확실성으로 사법당국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요구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각 당사국은 피고를 보호하고 권리남용을 방지하는데 충분하며 그러한 절차에 대한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하는 수준에서 정해진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국경조치와 관련된 특별 요건

18. 각 당사국은 자국의 세관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80]이 반출되어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에게 수입국의 법상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일단 성립된다고 권한 있는 당국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도록, 그리고 세관당국이 의심상품을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권리자가 알고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건은 이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각 당사국은 상품의 반출을 정지하는 신청이 자국 영역의 모든 반입 지점에 적용되며, 신청일부터 1년 이상의 기간 또는 그 상품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거나 관련 상표 등록이 유효한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 적용가능하도록 규정한다.

19.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의 반출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에게, 피고 및 권한 있는 당국을 보호하고 남용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이 그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그 물품이 침해상품이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 담보가 수입자 또는 수입된 물품의 소유자가 상품의 반출 정지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로부터 피해를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건부 증서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20. 권한 있는 당국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자국법에 따라 위조 또는 불법복제로 판정된 상품을 압수한 경우,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권리자에게 수출자·탁송인·수입자 또는 수탁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리고, 그 물품의 명세, 그 물품의 수량, 알려진 경우 그 물품의 원산지국을 권리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2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세관당국이 위조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직권으로[81] 국경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2. 각 당사국은 세관당국에 의하여 반출이 정지되고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몰수된 상품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폐기되도록 규정한다. 위조된 상표 상품에 대하여는,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그 상품의 상거래로의 반출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의 수출을 허용하거나 또는 그러한 상품이 그 밖의 통관절차의 대상이 되도록 허용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23. 상표 또는 저작권을 집행하기 위한 국경조치와 관련하여 신청수수료 또는 물품보관수수료가 산정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그 수수료를 이러한 조치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는 금액으로 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24. 각 당사국은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경조치의 집행에 관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양 당사국은 이러한 사안에 대한 양자적 및 지역적 협력을 증진한다.

형사절차와 구제

25. 각 당사국은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 위조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 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의 고의적인 수입 또는 수출을 형사처벌의 적용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 다룬다.[82]

26. 제25항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침해자의 금전적인 동기를 제거하려는 정책에 합치되게,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를 포함하는 처벌. 각 당사국은 나아가 사법당국이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수준에서 처벌하도록 권장한다.

나. 자국의 사법당국은 위조 또는 불법복제 의심상품과, 그 위법행위를 행하는 데 사용된 모든 관련 재료와 도구, 위법행위에 관련된 모든 증거서류, 그리고 침해 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압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각 당사국은 압수의 대상이 되는 품목이 그 명령에 규정된 일반적인 범주에 해당하는 한, 그러한 명령이 개별적으로 그 품목을 적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80] 제18항부터 제24항까지의 목적상,
가. "위조된 상표 상품"이란 포장을 포함하여 상품에 대하여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상표와 식별되지 아니하는 상표를 허락없이 부착하여, 수입국의 법에 따라 해당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을 말한다. 그리고
나.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이란 권리자 또는 제작 국가에서 권리자가 정당하게 허락한 이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복제물로, 그 복제가 수입국 법에 따라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구성하였을 물품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제작된 모든 상품을 말한다.

[8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직권조치가 시인이나 권리자로부터 공식적인 고소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82] 당사국은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의 수출에 관한 제25항의 의무를 배포에 관한 자국의 조치를 통하여 준수할 수 있다.

다. 자국의 사법당국은 특히 침해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몰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83] 그리고

라. 사법당국은 다음을 명령할 권한이 있다.

1) 모든 위조된 또는 불법복제된 상품의 몰수 및 폐기, 그리고

2)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하여,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으로 대부분 구성된 재료와 도구의 몰수 및/또는 폐기

각 당사국은 나아가 다호와 라호에 따른 몰수 및 폐기가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한다.

27. 각 당사국은 공중 상영 시설에서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저작물의 실연으로부터 그 영화저작물을 고의로 복제하거나 공중에 전송하는 인에 대하여 형사절차 및 처벌이 적용되도록 규정한다[84].

인터넷 상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특별 조치

28. 각 당사국은 인터넷 상에서 반복적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를 제공한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제한

29.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41조에 따라,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허용하는 집행 절차를 제공할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무단 저장 및 전송을 억지하는 데 있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85] 소유자와 협력하도록 하는 법적 유인책, 그리고

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통제, 개시 또는 지시하지 아니한 저작권 침해이면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하여 통제하거나 운영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이용가능한 구제의 범위에 대한 자국법상의 제한

[83] 이 항에 따른 호주의 의무의 목적상, 호주의 사법당국은 자국법상 최소한 기소범죄로 정의된 침해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몰수를 명령하도록 요구된다.

[84] 당사국은 침해 행위가 상업적 규모로 일어나는 경우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이 항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

[85] 이 항의 목적상, 저작권은 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

제 13.10 조
특정 공중보건조치에 관한 양해

1. 양 당사국은 2001년 11월 14일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이하 "도하 선언"이라고 한다)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제13.8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해석하고 이행함에 있어, 양 당사국은 도하 선언을 원용할 자격이 있다.

2. 각 당사국은 도하 선언 제6항에 관한 2003년 8월 30일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의 결정과 2005년 12월 6일 제네바에서 작성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의 이행에 기여하고 이를 존중한다.

제 13.11 조
경과 규정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 장에 효력을 부여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제13.5조제5항의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다.

제 13.12 조
지식재산 위원회

1. 제21.4조(위원회 및 작업반)에 따라 설립된 지식재산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2. 위원회는

가. 이 장의 이행을 검토, 감시 및 평가한다.

나. 이 장에 따른 협력 활동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권고한다.

다. 지리적 표시와 보통 명칭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라.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그리고

마. 이 장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또는 달리 합의하는 바에 따라 회합한다. 각 회의의 일자, 장소 및 의제는 접촉선 간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결정될 것이다.

4. 이 조의 목적상, 달리 통보되지 아니하는 한, 접촉선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호주의 경우, 외교통상부 또는 그 승계기관

제 13.13 조
정의

제13.5조 및 제13.7조의 목적상,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방송이란 유선 또는 무선수단에 의하여 소리 또는 소리와 이미지, 또는 그의 표현물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말하며, 복호화 수단이 방송사업자에 의하여 또는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공중에게 제공된 경우에 암호화된 신호의 유선 또는 무선송신을 포함한다. 방송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송신 또는 공중의 구성원이 수신의 시간과 장소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송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실연 또는 음반의 공중전달이란 방송 이외의 모든 매체에 의하여 실연의 소리, 음반에 고정된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효과적인 기술조치란, 통상적인 운영과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의 접근을 통제하거나,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보호하는 모든 기술·장치 또는 구성품을 말한다.

고정이란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의 체화로서, 장치를 통하여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이 인지·복제 또는 전달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당사국의 영역이나 당사국 영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적시하는 표시를 말한다.

실연자란 배우·가수·연주자·무용가와 문학 또는 예술저작물 또는 민속물의 표현을 연기·가창·전달·표현·연주·해석 또는 달리 실연하는 그 밖의 인을 말한다.

음반이란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에 수록된 고정물의 형태 이외의 실연의 소리, 그 밖의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의 고정물을 말한다.

음반제작자란 실연의 소리, 그 밖의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을 최초로 고정하는 것을 주도하고 이를 책임지는 인을 말한다.

실연 또는 음반의 발행이란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을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공중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복제물은 합리적인 수량으로 공중에 제공되어야 한다.

권리관리정보란 권리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로서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호되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 저작자나 그 밖의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호되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코드를 말한다. 그것은 이러한 정보 중의 어느 하나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복제물과 결합되거나 공중전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리고

세계지식재산기구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말한다.

제 14 장
경쟁 정책

제 14.1 조
목적

양 당사국은 경쟁,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정책의 이행,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협력, 그리고 양자간 무역과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반경쟁적 관행의 축소가 중요함을 인정한다.

제 14.2 조
경쟁의 촉진

1. 각 당사국은 경쟁법의 유지, 그리고 반경쟁적 관행에 대처하는데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간주하는 조치의 채택 및 집행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반경쟁적 관행을 해결하려 노력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을 유지한다. 각 경쟁 당국의 집행 정책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을 동종의 상황에서 당사국의 인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대우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 14.3 조
경쟁법의 적용

1. 당사국이 반경쟁적 관행을 금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그 조치에 따라 취한 집행 조치는 투명성, 적시성, 비차별성, 포괄성 및 절차적 공정성의 원칙과 합치한다.

2. 각 당사국은 모든 사업이 자국의 영역 내에서 시행 중인 경쟁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3.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특정 사업이나 분야를 경쟁법의 적용에서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면제는 투명하며 공공정책이나 공익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제 14.4 조
경쟁 중립성

양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모든 수준의 정부가 공기업에 대하여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영업 활동에 있어 경쟁상 혜택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 조는 공기업의 영업 활동에 적용되고, 비영업, 비상업적 활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조의 적용은 그 기업들에게 맡겨진 특정 공공 업무의 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14.5 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경쟁의 촉진 및 반경쟁적 관행의 축소를 증진하기 위한 협력 및 조정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와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 간 경쟁 및 소비자 보호법 적용에 관한 협력약정을 포함한 기존의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정보교환, 통보, 기술협력 및 국경간 집행 사안에 관한 조정을 포함한 경쟁법 및 정책의 개발과 집행에 있어 적절히 협력하고 조정할 수 있다.

제 14.6 조
통보

1. 각 당사국은 어떠한 집행활동이 다른 쪽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집행활동을 자국의 경쟁당국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에 통보한다.

2. 통보는 집행활동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다만, 그 통보는 양 당사국의 법에 반하지 아니하고 수행 중인 어떠한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14.7 조
협의

1.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반경쟁적 관행을 축소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협의에 이어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당사국의 경쟁당국의 재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14.8 조
국경 간 소비자 보호

양 당사국은 자국의 소비자 보호법의 집행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한 협력 및 조정을 증진한다.

제 14.9 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 14.10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반경쟁적 관행이란 다음과 같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업행위 또는 거래를 말한다.

가. 기업 간 반경쟁적인 협정 또는 약정

나. 지배력의 남용, 그리고

다. 반경쟁적 인수 및 합병, 또는 그 밖의 기업 간 반경쟁적 구조적 결합

경쟁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그 개정과 대체를 포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이행 규정, 그리고

나. 호주의 경우, 그 개정과 대체를 포함한 2010 년 「경쟁 및 소비자법」과 제 4 장 및 제 11 장 A 관련 규정, 그리고 제 10 장을 제외한 제 4 장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그 밖의 다른 장의 조항, 그리고

소비자 보호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그 개정과 대체를 포함한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들의 이행 규정, 그리고

나. 호주의 경우, 그 개정과 대체를 포함한 호주의 소비자법, 및 2010 년 「경쟁 및 소비자 법」 중 호주의 소비자법 관련 규정

제 15 장
전자상거래

제 15.1 조
목적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기회, 그 이용 및 개발에 대한 장벽 회피의 중요성,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한다.

제 15.2 조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양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제7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8장(금융서비스) 및 제11장(투자)의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의무의 대상이고 그러한 의무에 적용가능한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예외 또는 비합치 조치를 조건으로 함을 확인한다.

제 15.3 조
관세

어떠한 당사국도 양 당사국 간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15.4 조
국내 규제

1. 각 당사국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범법과, 적절한 경우, 그 밖의 국제 기준·지침 및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를 규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제적 부담의 최소화, 그리고

나. 전자상거래를 규제하는 당사국의 조치가 전자상거래의 산업 주도 발전을 지원하도록 보장

제 15.5 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1. 각 당사국은 전자거래의 당사자에게 다음을 허용하는 전자인증을 규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그 거래에 대하여 적절한 인증 방법의 결정, 그리고

나. 자신의 전자거래가 인증에 관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입증할 수 있는 기회의 보유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경우, 당사국은 전자금융거래와 같은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보안이 요구되는 거래에 대하여 인증의 방법이 특정한 보안 기준을 충족하거나 그 당사국의 법 또는 정책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 의하여 증명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양 당사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기초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이 발급하는 전자서명의 상호 인정을 위하여 노력한다.

4. 양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발급하는 전자서명의 상호운용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15.6 조
온라인 소비자 보호

1.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에 참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형태의 상거래에 참여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조치와 최소한 동등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양 당사국은 소비자의 복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활동에 관한 각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제 15.7 조
종이없는 무역

1. 각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가능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전자적 무역행정문서를 종이 형식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3. 종이없는 무역의 사용을 규정하는 이니셔티브를 개발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국제기구에서 합의된 방법을 고려한다.

제 15.8 조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 정보의 보호를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개인 정보 보호 기준의 개발에 있어,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 기준·지침 및 권고를 고려한다.

제 15.9 조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서신

1. 각 당사국은 요청하지 아니한 스팸과 텔레마케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서신을 규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각각 자국의 법과 규제를 조건으로, 요청하지 아니한 상업용 전자 서신의 규제와 관련하여 양자적으로 그리고 국제 포럼에서 협력한다. 협력 분야는 스팸과 텔레마케팅에 대한 기술적, 교육적 및 정책적 접근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제 15.10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전자인증이란 전자 통신 또는 거래의 당사자에 대한 신원을 입증하는 절차 또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서명이란 서명자를 확인하고 그 서명자가 전자기록에 서명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활용할 목적으로 전자기록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전자적 자료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전자적 전송이란 전자기적 또는 광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전송을 말한다.

개인정보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무역행정문서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한다. 그리고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서신이란, 인터넷 운반 서비스 또는 그 밖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동의 없이 또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전자적 주소로 송부되는 전자 서신[86](음성 서비스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6] 이 정의의 목적상, "전자 서신"이란 모사전송 서신을 포함할 수 있다.

제16 장
협력

제 1 절
농업, 수산업 및 임업

제 16.1 조
목적

이 절은 양자협력을 촉진하고 양자적, 지역적 및 다자적 수준에서 기존의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상호 경제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며 농업, 수산업 및 임업분야에서 양 당사국 간 협력을 촉진하고, 새로운 협력활동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6.2 조
적용범위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가. 혁신, 연구 및 개발

나. 일차상품 및 가공상품을 포함한 농업

다. 수산업 및 양식업

라. 임업

마.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

바. 식량공급안보, 그리고

사. 양 당사국이 확인하고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협력분야

제 16.3 조
협력활동

양 당사국은 농업, 수산업 및 임업분야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에 의한 협력활동을 증진한다. 협력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교환을 포함한 정보교환

나. 기술적 협력

다. 공동 연구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라. 전문가, 연구원, 학생 및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교류

마. 학회, 세미나 및 워크샵

바. 관련 지역기구 및 국제기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의견교환

사. 특히 농업, 수산업 및 임업 분야 교육기관의 학생 및 졸업생을 위한 합동훈련 연습

아. 민간 부문 협력 증진

자. 상호 투자기회의 증진과 촉진

차. 농장 및 관련 생산시설 연구방문, 그리고

카. 양 당사국이 확인하고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

제 16.4 조
혁신, 연구 및 개발

1. 양 당사국은 농업, 수산업 및 임업의 혁신, 연구 및 개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적절한 경우 관련 분야의 협력활동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활동은 다음의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개발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나. 물 관리 및 물 이용의 효율성

다.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라. 기후관련 극단적 변화 완화

마. 생식기술, 영양 및 가축 식별과 추적시스템을 포함한 축산 실무

바. 농업, 수산업, 임업 및 식량의 생산성 향상

사. 농장 차단 방역을 포함한 차단 방역

아. 동물 및 식물 질병 연구

자. 생명공학

차. 식품안전, 그리고

카. 양 당사국이 확인하고 합의하는 혁신, 연구 및 개발의 그 밖의 모든 분야

2. 양 당사국은 연구기관들 간 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16.5 조
농업

한국과 호주 농업인들과 기업농들 간 협력관계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합의하는 농업사안에 대한 협력활동을 수행한다.

가. 축산 및 축산 가공업, 작물경작, 원예, 관개농업 및 천연섬유 생산을 포함한 농업

나. 농업개혁 및 농업정책

다. 농업경제학

라. 세대교체 및 농가승계 계획

마. 농촌개발

바. 도시근교농업 및 도시농업

사. 환경 및 천연자원 경제와 관리

아. 식물, 동물 및 인체 영양의 작물학적 및 유전학적 향상을 포함한 영양

자. 지속가능한 보전농경기술, 그리고

차. 양 당사국이 확인하고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농업사안

제 16.6 조
수산업 및 양식업

1.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수산업 및 양식업 분야에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협력 분야는 다음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수산업, 양식업 및 어류자원에 관한 정보교환을 포함할 수 있다.

가. 부수어획 및 어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의 최소화

나. 해양해충

다. 레저어획

라.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획

마. 기후변화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바. 수산업 경제학과 자원 관리

2. 그 밖의 협력 분야는 양 당사국이 확인하고 합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양 당사국은 이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수산업 협력 약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 16.7 조
임업

임업 분야에서 현재 높은 수준의 양자협력 현황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추가 협력기회를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통나무 및 목재칩을 포함한 목제자원 무역의 증진

나. 산림자원의 개발, 이용 및 지속가능한 관리

다. 기후변화가 산림자원에 미치는 영향

라. 산불관리 및 통제

마. 산림간벌

바. 산림해충 통제

사. 농가임업

아. 불법 벌채 및 관련 무역의 방지, 그리고

자. 양 당사국이 확인하고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협력 분야

제 16.8 조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

양 당사국은 인간, 동물이나 식물 건강 및 식품안전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지역 동물 및 식물 질병 감시

나. 동물 질병, 식물 해충 및 질병의 예방 및 통제

다. 식품 내 병원성 미생물 탐지 방법

라. 농약 및 수의용 약제 잔여물의 규제 및 통제와 그 밖의 식품안전 분제, 그리고

마. 그 밖의 모든 상호 관심이 되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건강 및 안전 문제

제 16.9 조
식량공급 안보

1. 양 당사국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식량공급의 유지 및 식량안보 목적의 이행을 위한 국내 농업생산과 양자무역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관련 지역 및 국제포럼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세계적 식량안보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한다.

3. 장기적 식량안보를 달성하는 데 있어 쌍방무역 및 투자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농업 및 식량에서 생산적이고 호혜적인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주요 식량 및 사료용 곡물의 극심하고 지속적인 공급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협력 체제(농업 협력 위원회를 포함할 수 있다)를 통하여, 그 사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된 요소를 조사하기 위하여 협의를 실시한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협의를 통하여 사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며 양 당사국이 이용가능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그 영토에서 설립된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금지나 제한을 도입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어떠한 수출금지나 제한조치를 실제로 이행하기 전에, 농업 협력 위원회에서 그런 금지나 제한조치의 영향과 관련 구제조치들을 적절히 고려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협의를 실시한다. 수출 금지 또는 제한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양 당사국은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개방시장과 연속되는 공급망의 조기 회복을 위하여 협의를 실시한다.

6. 각 당사국은 농산물 수출에 있어 높은 수준의 안전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고 고품질 식량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인정한다.

제 16.10 조
접촉선

1. 각 당사국은 이 절의 운영과 관련된 접촉선을 지정한다. 이 절의 목적상, 접촉선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호주의 경우, 농림부 또는 그 승계 기관

2. 접촉선은,

   가. 이 절과 관련하여 정보 교환을 촉진한다.

   나. 제16.11조에 언급된 농업 협력 위원회를 조정한다. 그리고

   다. 이 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양 당사국 간 그 밖의 모든 의사소통을 촉진한다.

제 16.11 조
농업 협력 위원회

1. 제21.4조(위원회 및 작업반)에 따라 설립된 농업 협력 위원회는 농업, 수산업 및 임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이 절의 이행의 검토, 점검 및 평가

   나. 양 당사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이 절 하에서의 협력활동에 관한 권고

   다. 이 절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논의, 고려 및, 적절한 경우, 해결,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기능

3.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또는 달리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각 회합의 일자, 장소 및 의제는 접촉선 간의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결정한다.

제 16.12 조
재원

1. 이 절의 목적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절에 구상되어 있는 협력활동은 적절한 재원이 지원될 때에만 효과적으로 이행가능함을 인정하며, 양 당사국은 자국의 역량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자국의 경로를 통하여 그러한 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원을 제공한다.

2. 농업 협력 위원회가 자신의 연례 작업 계획의 일부로 확인하고 발전시키는 특정 협력활동을 위한 재원제공에 관한 추가적 세부사항은 농업 협력 위원회가 정한다.

3. 안정적이고 이용가능한 재원으로의 접근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농업 협력 위원회는 자신의 협력활동 이행에 활용될 수 있는 공동의 정기적인 재정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한다.

제 2 절
에너지 및 광물자원

제16.13 조
목적

이 절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분야에서 양 당사국 간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확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6.14 조
협력활동

1. 양 당사국은 각각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분야의 공공 및 민간 부문에 의한 협력활동을 증진한다.

2. 협력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에너지 효율 조치 및 기후변화 관련 조치를 포함하여,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탐사, 채취, 가공, 운송 및 이용에 관한 연구 및 개발과 같은 분야에서의 공동 활동

   나. 에너지 효율 조치 및 기후변화 관련 조치를 포함하여,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탐사, 채취, 가공, 운송 및 이용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교환

   다. 에너지 효율 조치 및 기후변화 관련 조치를 포함하여,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탐사, 채취, 가공, 운송 및 이용에 관한 학술적이고 과학적인 교류 증진, 그리고

   라. 양 당사국 간 공공, 학계 및 민간 부문의 관련 전문가, 기술자 및 지도자에 의한 것과 같은 방문 및 교류

제 16.15 조
무역 및 투자의 증진 및 원활화

1.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분야에서 호혜적인 무역 및 투자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분야와 관련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

   가. 신생 기술과 재생 에너지를 포함하여,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탐사, 채취, 가공, 운송 및 이용에 관한 투자의 장려

   나. 각각 자국의 법, 규정 및 정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투자 정보의 제공 및 교환의 촉진

   다. 각 당사국의 투자증진 활동 장려 및 지원, 그리고

   라. 투자자를 위한 안정적이고, 공평하며, 우호적이고 투명한 여건의 유지 및 육성

3. 제11.2조(다른 장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 장과 제11장(투자) 간의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제11장이 우선한다.

제 16.16 조
정보의 교환

양 당사국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한다. 이러한 정보교환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분포, 매장량 및 개발계획에 관한 지질학적 자료 또는 정보

   나.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탐사, 채취, 가공, 운송 및 이용과 관련된 투자에 관한 정보

   다. 입찰, 기반시설 개발 및 채굴사업과 같은 투자기회에 관한 정보

   라. 투자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탐사, 채취, 가공, 운송 및 이용과 관련된 각자의 법, 규정 및 정책에 관한 정보

   마. 광해 방지 기술, 환경관리 및 그 밖의 자원관리 규정이나 관행에 관한 정보

   바. 석탄, 석유, 가스, 전기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현재 및 미래동향에 관한 정보

   사.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탐사, 채취, 가공, 운송 및 이용과 관련된 현재 및 계획된 기반시설 개발에 관한 정보, 그리고

   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관련된 정보

제 16.17 조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안보

1. 양 당사국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안보의 중요성과 장기적 안보를 달성하는 데 있어 무역, 투자 및 협력이 수행하는 역할을 인정한다.

2. 주요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극심하고 지속적인 공급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협력체제(에너지 및 광물 자원 협력 위원회를 포함할 수 있다)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사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며 당사국에게 이용가능한 적절한 조치를 모색하기 위하여 협의를 실시한다.

제 16.18 조
접촉선

1. 각 당사국은 이 절의 운영과 관련된 접촉선을 지정한다. 이 절의 목적상, 접촉선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호주의 경우, 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2. 접촉선은,

   가. 이 절과 관련하여 정보 교환을 촉진한다.

   나. 제16.19조에 언급된 에너지 및 광물 자원 협력 위원회를 조정한다. 그리고

   다. 이 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그 밖의 모든 의사소통을 촉진한다.

제 16.19 조
에너지 및 광물 자원 협력 위원회

1. 제21.4조(위원회 및 작업반)에 따라 설치되는 에너지 및 광물 자원 협력 위원회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이 절의 이행의 검토, 점검 및 평가

   나. 각 당사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이 절 하에서의 협력활동에 관한 권고

   다. 이 절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논의,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기능

3. 양 당사국은 상호동의에 의하여, 논의될 사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의 대표를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또는 달리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각 회합의 일자, 장소 및 의제는 접촉선 간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결정한다.

제 16.20 조
재원

1. 이 절의 목적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절에 구상되어 있는 협력활동은 적절한 재원이 지원될 때에만 효과적으로 이행가능함을 인정하며, 양 당사국은 자국의 역량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자국의 경로를 통하여 그러한 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원을 제공한다.

2.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위원회가 자신의 연례 작업 계획의 일부로 확인하고 발전시키는 특정 협력활동을 위한 재원제공에 관한 추가적 세부사항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위원회가 정한다.

3. 안정적이고 이용가능한 재원으로의 접근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위원회는 자신의 협력활동 이행에 활용될 수 있는 공동의 정기적인 재정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한다.

제 17 장
노동

제 17.1 조
일반원칙

1. 각 당사국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과 그 후속조치(1998 년)(이하 "국제노동기구선언" 이라 한다)에 따른 약속을 확인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규정, 정책 및 관행에서 국제노동기구선언에 기술된 대로 다음의 기본 원칙 및 권리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나. 모든 형태의 강제적 또는 강요에 의한 노동의 철폐

다.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 그리고

라.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의 철폐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자국의 정책과 국가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러한 정책과 우선순위에 따라 자국의 노동 법, 규정 및 관행을 채택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자국의 노동 법 및 규정을 집행하지 못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제 1 항에 따라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노동법 및 규정, 그리고

나. 자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문서를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노동 법 및 규정

각 당사국은 자국 노동법의 집행에서의 조사, 기소, 규제 및 준수 사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재량을 행사하고, 집행에 대한 자원 배분에 관하여 선의의 결정을 내릴 권리를 보유한다.

4.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의 무역의 장려를 위하여, 또는 자국의 영역에서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또는 유지의 장려를 위하여, 제 1 항에 언급된 기본 원칙 및 권리의 준수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자국의 노동 법, 규정, 정책 및 관행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적용을 면제하겠다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5. 각 당사국은 보호무역주의 목적을 위하여 자국의 노동 법, 규정, 관행 또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

제 17.2 조
절차적 보장

제 19 장(투명성)에서 발생하는 이 장과 관련한 모든 사안은 제 17.4 조에 따른다.

제 17.3 조
제도적 장치

접촉선

1.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노동 사안을 위한 접촉선을 지정한다. 이 항의 목적상, 달리 통보되지 아니하는 한, 접촉선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그 승계기관

나. 호주의 경우, 고용부 또는 그 승계기관

임시 위원회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이 장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임시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을 적절히 고려한다. 임시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노동부 및/또는 그 밖의 적절한 기관과 부처의 적절한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임시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사안을 논의한다.[87]

제 17.4 조
협의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협의 요청을 전달한 후 신속하게 개시된다. 양 당사국은 사안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시도를 한다.

2. 제 1 항에 따른 협의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당사국이 그 사안에 대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 17.3 조제 2 항에 따라 임시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임시 위원회의 설치가 이 항에 따라 요청되는 경우, 그 임시 위원회는 과도한 지체없이 설치되고 그 사안의 해결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87] 편리한 경우, 임시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참여하는 국제노동기구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국제기구의 회의에서 회합할 수 있다.

제 17.5 조
협력

1.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정책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제 2 항과 제 3 항에 규정된 상호 관심 있는 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을 통하여 긴밀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2. 협력 분야는 노사관계, 근로조건, 직업상의 안전 및 보건, 직업훈련 및 인적자원개발과 노동통계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3. 협력 활동은, 각 당사국의 이용가능한 자원을 고려하여, 사람과 정보의 교환, 관련 지역 및 국제 포럼[88]·학회 및 세미나에서의 협력, 공동연구 또는 합작사업의 개발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노동기준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노동기구 내에서의 기술협력의 자금조달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제 17.6 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제 17.2 조에 언급된 것과 같은 사안을 포함하여,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88] 관련 지역 및 국제 포럼은 아시아태평양지역정부그룹(Asia-Pacific Government Group) 및 선진국그룹(Industrialised Market Economies Group)과 같은 국제노동기구 정부그룹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를 포함한다.

제 18 장
환경

제 18.1 조
보호 수준

1. 자국의 환경보호 수준과 자국의 환경발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국의 환경 법, 규정 및 정책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각 당사국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규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규정하고 장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러한 환경 법, 규정 및 정책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환경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보호무역주의 목적을 위하여 환경 법, 규정 또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

제 18.2 조
다자 간 환경협정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다자간 환경협정이 환경 보호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당사국 각자의 이러한 협정의 이행이 이러한 협정의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대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다자간 환경협정과 국제무역협정의 상호 지지를 증진시키는 수단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상호 관심 있는 무역관련 환경 문제에 관한 협상에 대하여 협의한다.

제 18.3 조
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

1. 어떠한 당사국도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자국의 환경 법, 규정 및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 법, 규정 및 정책의 집행에서의 조사, 기소, 규제 및 준수 사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재량을 행사하고, 집행에 대한 자원 배분에 관하여 선의의 결정을 내릴 권리를 보유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 법, 규정 및 정책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의 무역의 장려를 위하여, 또는 자국의 영역에서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또는 유지의 장려를 위하여, 그러한 법, 규정 및 정책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그러한 법, 규정 및 정책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적용을 면제하겠다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제 18.4 조
환경친화적 무역

각 당사국은 관련 비관세장벽을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을 포함하여, 환경기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환경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제 18.5 조
절차적 보장

제 19 장(투명성)에 따라 발생하는 이 장과 관련한 모든 사안은 제 18.7 조에 따른다.

제 18.6 조
제도적 장치

접촉선

1.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환경 사안을 위한 접촉선을 지정한다.

임시 위원회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임시 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을 적절히 고려한다. 임시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환경부 및/또는 그 밖의 적절한 기관과 부처의 적절한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임시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한다.[89]

제 18.7 조
협의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협의 요청을 전달한 후 신속하게 개시된다. 양 당사국은 사안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시도를 한다.

2. 제 1 항에 따른 협의로 해당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당사국이 그 사안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 18.6 조제 2 항에 따라 임시 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임시 위원회의 설치가 이 항에 따라 요청되는 경우, 그 임시 위원회는 과도한 지체없이 설치되고 그 사안의 해결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89] 편리한 경우, 임시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참여하는 적절한 국제기구의 회의에서 회합할 수 있다.

제 18.8 조
협력

1.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제 2 항과 제 3 항에 규정된 상호 관심 있는 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을 통하여 긴밀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2. 협력분야는 환경 법과 규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국제기후변화체제의 무역 관련 측면, 무역관련 환경문제 및 생물다양성의 무역관련 측면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3. 협력활동은 사람과 정보의 교환, 무역협정의 환경영향에 대한 정보공유, 관련 지역 및 국제 포럼·학회 및 세미나에서의 협력과, 공동연구 또는 합작사업의 개발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제 18.9 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제 18.5 조에 언급된 것과 같은 사안을 포함하여,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 19 장
투명성

제 19.1 조
공표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 규정, 절차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실행가능한 경우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가. 자국이 채택을 제안하는 그러한 모든 법, 규정, 절차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사전에 공표한다. 그리고

   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제 19.2 조
정보의 제공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그 요청 당사국이 이전에 그 조치를 통보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요청 당사국이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실제 또는 제안된 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한다.

제 19.3 조
행정절차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법, 규정, 절차 및 행정판정이 일관되고 공평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2.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규정, 절차 및 행정 결정을 일관되고 공평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를 적용하는 자국의 행정절차에 있어서 다음을 보장한다.

   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절차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그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 절차가 개시되는 법적 권한에 대한 진술 및 쟁점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한 합리적인 통보를 절차가 개시된 때에 그 당사국의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

   나. 시간, 절차의 성격, 그리고 공익이 허용하는 때에는, 그러한 인에게 최종 행정처분 이전에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 그리고

   다. 자국의 절차는 자국 법에 따를 것

제 19.4 조
재심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최종 행정처분의 신속한 재심을 목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 사법·준사법 또는 행정재판소나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그러한 재판소는 공평하고, 행정집행을 맡은 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에서 그 절차의 당사자에게 다음의 권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가.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 그리고

   나. 증거와 기록된 제출자료, 또는 그 당사국의 법에서 요구되는 경우 행정당국에 의하여 취합된 기록에 기초한 결정

3. 각 당사국은 자국 법에 규정된 불복청구 또는 추가재심을 조건으로, 문제가 된 행정처분에 관련된 부서 또는 당국에 의하여 그러한 결정이 이행되고 그러한 결정이 이들의 관행을 규율하도록 보장한다.

제 19.5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이란 그 범위에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모든 인과 사실 상황에 적용되고 행위규범을 형성하는 행정판정 또는 해석을 말하나,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행정 또는 준사법적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이나 판정, 또는

   나. 특정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하여 내려진 판정

제 20 장
분쟁해결

제 20.1 조
협력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하며, 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을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제 20.2 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거나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이 협정의 이행,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또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의무와 불합치한다.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다. 또는

다.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의 결과로서 제2장(상품 무역),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4장(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7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2장(정부조달)상 당사국이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다.

제 20.3 조
접촉선

1. 각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개시된 분쟁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접촉선을 지정한다.

2. 이 장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요청, 통보, 서면 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는 지정된 접촉선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전달된다.

제 20.4 조
분쟁해결 포럼의 선택

1. 이 장의 분쟁해결 규정의 이용은, 분쟁해결 조치를 포함한 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의 어떠한 조치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2. 그러나, 특정한 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이 이 협정 또는 세계무역기구 협정 중 어느 한쪽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첫 번째 절차가 종결되거나 제소 당사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다른 쪽 포럼에서 동일한 조치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이에 더하여,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무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이 두 협정 중 어느 한쪽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한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첫 번째 절차가 종결되거나 제소 당사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다른 쪽 포럼에서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무의 시정을 구하기 위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첫 번째 포럼이 절차적 또는 관할권상의 이유로 그 주장에 대하여 조사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국은 다른 쪽 포럼에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4. 제2항과 제3항의 목적상,

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부속서 2에 포함된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이하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당사국의 패널 설치 요청으로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이하 "분쟁해결기구"라 한다)가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16조 및 제17.14조에 따라, 각 경우에 맞게, 패널보고서 및 상소기구보고서를 채택하는 때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나.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는 제20.8조에 따라 당사국의 분쟁해결패널 설치 요청으로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 패널이 제20.11조에 따라 양 당사국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때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20.5 조
해석 규칙

패널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반영된 국제공법에 관한 관습적인 해석규칙에 따라 이 협정을 해석한다. 이 협정상의 의무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상의 의무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패널은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에서 수립된 관련 해석과 합치하는 해석을 채택한다. 패널의 판정은 이 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없다.

제 20.6 조
협의

1.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제20.2조에 기술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에 대한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한 요청의 사유 및 그 밖의 모든 쟁점을 제시한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응답하고 협의를 개시한다.

2. 각 당사국은

가.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나.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비밀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제 20.7 조
공동위원회 회부

1. 양 당사국이 제20.6조에 따른 협의요청의 전달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그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2. 공동위원회는 신속하게 회합하고,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제 20.8 조
패널의 설치

1. 제20.7조에 기술된 통보의 전달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기간 이내에 사안이 해결되지 못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그 사안을 검토하는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의 적시와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사실적 및 법적 근거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포함한 요청의 사유를 명시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대로, 패널 설치를 요청하는 서면통보의 전달일부터 5일 이내에, 양 당사국은 패널 선택 절차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를 개시한다.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양 당사국이 사안을 회부하는 서면통보의 전달일부터 15일 이내에 패널 선택 절차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언제라도, 다른 쪽 당사국에게 가호와 나호에 규정된 절차를 이용하고자 함을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통보가 이루어지면, 패널은 가호와 나호에 따라 구성된다.

가. 패널은 3명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패널 설치를 요청하는 서면통보의 전달일부터 30일 이내에,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국민일 수 있는 1명의 패널위원을 임명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패널 의장인 세 번째 패널위원의 임명을 위한 3명의 후보명부를 제공한다. 양 당사국은 그 후 후보명부를 검토하여 세 번째 패널위원 임명을 목적으로 상호 협의한다. 그리고

나. 모든 패널위원이 제1항에 규정된 대로, 패널 설치를 요청하는 서면통보의 전달일부터 45일 이내에 임명되지 못한 경우, 남아 있는 패널위원 중에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의장 또는 정규 위원으로의 임명을 위한 후보명부에서 추첨으로 임명된다.

3. 이 조에 따라 임명된 패널위원이 사임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후임 패널위원은 원래의 패널위원의 임명에 대해서 규정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임명되고, 원래의 패널위원의 모든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패널의 업무는 후임 패널위원의 임명 동안 중단된다.

4. 패널의 설치일은 제2항에 따라 마지막 패널위원이 임명되는 날이다.

5. 이 조에 따라 패널에 임명된 개인은

가.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된다.

나. 법, 국제 무역,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한다.

다.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제휴 관계가 없거나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라. 어떠한 자격으로도 사안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마. 양 당사국에 독립성 또는 공평성에 관하여 정당화할 수 있는 의혹을 초래하는 정보를 공개한다. 그리고

바. 부속서 20-가에 명시된 행동규범을 준수한다.

6.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의장은 어느 쪽 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구성원이다.

7. 제20.13조제4항, 제20.14조제5항, 제20.14조제6항, 또는 제20.15조제1항에 따라, 패널이 재소집되는 경우, 그 재소집된 패널은 가능한 경우 원래의 패널과 같은 패널위원을 가진다. 기존 패널위원으로 모든 패널이 재소집될 수 없는 경우, 제2항부터 제6항에 명시된 패널 선택 절차를 적용한다.

제 20.9 조
패널의 기능

1. 패널은 다음의 객관적인 평가를 포함하여,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

가. 사건의 사실관계

나. 양 당사국이 언급한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 그리고

다. 다음의 여부

1)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하는지

2)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는지, 또는

3) 문제가 되는 조치가 제20.2조다호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는지

2. 패널 설치의 요청을 전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패널 설치 요청에서 언급된 사안을 양 당사국이 언급한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조사하고, 제20.11조제1항 및 제20.11조제2항에 규정된 대로 조사·판정 및 적용가능한 경우 권고를 하며, 제20.11조제1항 및 제20.11조제4항에 언급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3. 이 조는 제20.13조제4항, 제20.14조제5항, 제20.14조제6항 또는 제20.15조제1항에 따라 재소집된 패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0.10 조
절차 규칙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제3항을 조건으로, 패널은 부속서 20-나에 규정된 모범 절차규칙을 따른다.

2. 패널은 양 당사국과의 협의 후, 모범 절차규칙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절차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3. 제20.13조제4항, 제20.14조제5항, 제20.14조제6항, 또는 제20.15조제1항에 따라 재소집된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이 장 또는 모범 절차규칙과 상충하지 아니하는 패널의 자체 절차를 제정할 수 있다.

제 20.11 조
패널 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의장이 임명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사건의 사실관계 및 이 협정 규정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와 다음에 대한 판정을 포함한 최초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가. 다음의 여부

1)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하는지

2)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는지, 또는

3) 문제가 되는 조치가 제20.2조다호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 패널이 다루도록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요청한 그 밖의 모든 사안 및 그 조사결과와 판정에 대한 사유

2. 패널은 이 협정의 관련 규정과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 그리고 그 절차규칙에 따라 획득한 모든 정보나 기술적 자문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양 당사국의 공동 요청이 있는 경우, 패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최초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최초 보고서에 대한 양 당사국의 서면 의견을 고려한 후, 패널은 보고서를 수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최초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45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양 당사국은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다.

5. 제1항, 제3항, 그리고 제4항은 제20.13조제4항, 제20.14조제5항, 제20.14조제6항, 또는 제20.15조제1항에 따라 재소집된 패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0.12 조
절차의 정지 및 종료

1. 양 당사국은 패널이 그러한 합의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언제라도, 패널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지된 패널은 재개된다. 패널의 업무가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정지되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 설치 권한은 소멸된다.

2. 상호 만족할 만한 분쟁의 해결에 이른 경우, 양 당사국은 패널절차를 종료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3. 패널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패널은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양 당사국에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되도록 제안할 수 있다.

제 20.13 조
최종 보고서의 이행

1. 패널의 최종 보고서가

가.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한다거나 피소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판정을 포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그 조치가 이 협정과 합치되게 할 의무가 있다. 또는

나. 제20.2조다호의 의미상의 비위반 무효화 또는 침해에 대한 판정을 포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그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거나 제소 당사국과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이르러야 할 의무가 있다.

2. 패널의 최종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20일 이내에,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에 다음을 통보한다.

가. 이행에 관한 목적상, 제1항을 준수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나. 그 이행이 신속히 일어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다. 그러한 이행이 즉시 일어날 수 없는 경우, 피소 당사국이 이행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기간

3. 합리적인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양 당사국이 상호 결정한다. 양 당사국이 최종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30일 이내에 합리적인 기간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판정을 패널에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요청은 최종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4. 제3항에 따라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패널은 양 당사국에게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판정, 그리고 그러한 판정에 대한 사유를 포함한 보고서를 그 요청일부터 45일 이내에 제출한다. 이러한 판정을 내리기 전에, 패널은 양 당사국으로부터 서면 통보를 구한다. 그리고 어느 한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패널은 양 당사국과 회의를 소집하여 각 당사국이 자국의 입장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지침으로는, 패널이 판정한 합리적인 기간은 패널의 최종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15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합리적인 기간은 특정한 상황에 따라 짧거나 길 수 있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1.3조다호상의 증재에 적용된 원칙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 20.14 조
불이행

1. 다음의 경우 피소 당사국은 상호 수용가능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소 당사국과 협상을 개시한다.

가. 제20.13조에 언급된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또는

나. 피소 당사국이 제소 당사국에 제20.13조제1항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자 함을 통보하였을 때

2. 양 당사국이

가. 그러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한 기간이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보상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거나, 또는

나. 보상에 합의하였으나, 피소 당사국이 합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제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 대하여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혜택의 적용을 정지하고자 한다는 서면통보를 그 이후 언제라도 피소 당사국에게 할 수 있다. 그 통보에는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겠다고 제안하는 혜택의 수준이 명시된다. 제소 당사국은 각 경우에 맞게, 이 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하거나 패널이 제5항에 따라 판정을 내린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30일 이후에 혜택의 정지를 개시할 수 있다.

3. 제2항에서 발생하는 혜택을 정지할 권리는 제20.15조에 따라 수행되는 이행 검토 절차 중에는 행사되지 아니한다.

4. 제2항에 따라 어떤 혜택을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

가. 제소당사국은 패널이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한 조치에 영향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 또는 제20.2조다호의 의미상의 무효화나 침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된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하도록 우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 동일한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하는 것이 실행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제소 당사국은 다른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5. 피소 당사국이

가.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겠다고 제안한 혜택의 수준이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나.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이 제2항에 따라 통보를 한 후 30일 이내에, 패널이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피소 당사국은 자국의 요청을 서면으로 제소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패널은 그 요청의 전달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재소집하고, 가호 또는 나호 중 하나에 따른 요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소집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가호와 나호 모두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는 120일 이내에, 자신의 판정을 양 당사국에게 제출한다. 정지하겠다고 제안된 혜택의 수준이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하지 아니하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패널은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혜택의 수준을 판정한다.

6. 혜택을 정지할 권리가 이 조에 따라 행사된 경우, 제소 당사국이 정지한 혜택의 수준이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하지 아니하다고 피소 당사국이 판단하면, 피소 당사국은 패널이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패널이 재소집되는 경우, 제5항의 기간이 적용된다. 제소 당사국이 정지한 혜택의 수준이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하지 아니하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패널은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혜택의 수준을 판정한다.

7.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소 당사국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패널이 판정한 수준, 또는 패널이 그 수준을 판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당사국이 제2항에 따라 정지하겠다고 제안한 수준까지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제 20.15 조
이행 검토

1. 제20.14조제5항에 규정된 절차를 저해함이 없이,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피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그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그 사안을 그 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패널은 요청의 전달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재소집하여 서면통보의 전달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2.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자국이 제20.14조에 따라 정지하였던 혜택을 신속하게 복원한다.

3. 이 조에 따라 또는 제20.14조제5항나호와 관련하여 재소집된 패널은 다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포함하여,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

가. 제20.13조제1항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피소 당사국이 취한 모든 조치의 사실관계, 그리고

나. 피소 당사국이 제20.13조제1항의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4. 이 조에 따라, 또는 제20.14조제5항나호와 관련하여 재소집된 패널은 다음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서에 명시한다.

가. 사건의 사실관계, 그리고

나. 피소 당사국이 제20.13조제1항 상의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제 20.16 조
사적 권리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에 불합치한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자국법상의 제소권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제 20.17 조
비용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위원의 보수를 포함한 패널의 비용은 양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 20.18 조
기간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이 장에 규정된 모든 기간은 양 당사국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부속서 20-가
행동규범

절차에 대한 책임

1. 모든 패널위원은 분쟁해결절차의 완전무결성과 공평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부정과 부정의 인상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이해의 상충을 피하고, 고도의 행동규범을 준수한다. 전임 패널위원들은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한다.

공개 의무

2. 이 협정에 따라 패널위원으로서 그의 선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후보자는 자신의 독립성 또는 공평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거나, 절차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공개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후보자는 그러한 모든 이해, 관계 및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3. 일단 선정되면, 패널위원은 제2항에 언급된 모든 이해, 관계 및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양 당사국의 검토를 위하여 공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이를 전달함으로써 이를 공개한다. 공개 의무는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이해, 관계 및 사안을 패널위원이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지속적인 의무이다.

패널위원의 임무 수행

4. 패널위원은 이 장의 규정 및 적용 가능한 절차 규칙을 준수한다.

5. 선정되는 경우, 패널위원은 절차의 과정 내내 공정하고 근면하게 자신의 임무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행한다.

6. 패널위원은 절차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다른 패널위원의 참여기회를 부인하지 아니한다.

7. 패널위원은 그 절차에서 제기되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그러한 문제들만을 검토하며, 결정할 임무를 그 밖의 어떠한 사람에게도 위임하지 아니한다.

8. 패널위원의 보조인 및 직원이 제1항, 제2항, 제3항, 제18항, 제19항 및 제20항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패널위원은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9. 패널위원은 절차에 관하여 일방적 접촉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10. 패널위원은 이 부속서의 실질적 혹은 잠재적 위반에 관한 사항을, 패널위원이 이 부속서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양 당사국 모두에게 전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달하지 아니한다.

패널위원의 독립성과 공평성

11. 패널위원은 독립적이고 공정하다. 패널위원은 공정하게 행동하고, 부정 또는 편향의 인상을 야기하는 것을 피한다.

12. 패널위원은 자신의 이익, 외부 압력, 정치적 고려, 공중의 요구, 당사국에 대한 충성 또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3. 패널위원은 패널위원의 임무에 대한 적절한 수행을 어떠한 식으로든 방해하거나 방해할 인상을 주는 모든 의무나 혜택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부담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한다.

14. 패널위원은 모든 개인적 또는 사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패널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패널위원은 다른 사람이 특정한 지위에서 패널위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상을 야기하는 행위를 회피한다. 패널위원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한다.

15. 패널위원은 과거 또는 기존의 재정적,•사업적,•직업적,•가족 또는 사회적 관계나 책임이 그의 행위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16. 패널위원은 그의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어떠한 관계를 맺거나 어떠한 재정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피한다.

특정 상황에서의 임무

17. 패널위원 또는 전임 패널위원은 그 패널위원이 패널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편파적이었거나 패널의 결정 또는 판정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비밀의 유지

18. 패널위원이나 전임 패널위원은 절차의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에 관한 모든 비공개 정보 또는 절차 과정에서 획득된 모든 비공개 정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 이익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다.

19. 패널위원은 공표에 앞서 패널 판정 또는 그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20. 패널위원 또는 전임 패널위원은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패널의 심의 또는 패널위원의 견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정의

21. 이 부속서의 목적상

보조인은 패널위원 임명의 조건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거나 패널위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패널위원이란 제20.8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절차란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에 따른 패널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직원이란 패널위원에 관해서는, 보조인 외에 패널위원의 지시 및 통제하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부속서 20-나
모범 절차규칙

1. 이 규칙에서 이루어진 조에 대한 언급은 이 장 내 적절한 조에 대한 언급이다.

일정표

2. 양 당사국과 협의 후, 패널은 패널의 설치 후 10일 이내에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패널절차를 위한 일정표를 정한다. 이 규칙에 첨부된 일정표는 지침대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패널절차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적으로, 패널 설치일부터 최종 보고서의 마감일까지 27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패널절차의 일정표를 결정함에 있어서, 패널은 양 당사국이 각각의 입장을 준비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패널은 양 당사국의 서면 입장제출을 위하여 정확한 기한을 정한다.

4. 패널절차에 적용가능한 모든 기간은 패널위원이 사임하거나 활동할 수 없게 되는 날부터 후임 패널위원이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정지된다.

패널의 운영

5. 패널 의장은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패널은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6. 이 규칙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전화, 모사전송 및 그 밖의 모든 전자 통신 수단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어떻게든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7. 패널위원만이 패널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절차에 요구될 수 있는 수만큼의 보조원, 통역사 또는 번역사, 또는 지정된 기록원을 보유할 수 있고 그들이 심의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패널에 의하여 수립된 모든 협정은 양 당사국의 합의로 수정될 수 있다.

8. 패널의 심의는 기밀이다. 패널위원 및 패널이 보유한 사람은 패널절차 및 심의의 기밀성을 유지한다.

9. 이 규칙에서 다루지 아니하는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 후, 이 협정과 합치하는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10. 패널이 고려중인 사안에 관하여 패널과의 의사소통은 일방적이지 아니한다.

서면 입장 및 그 밖의 문서

11. 각 당사국은 사건의 사실관계 및 주장을 기술하는 첫 번째 서면 입장을 패널 및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소 당사국은 패널의 설치일 후 14일 이내에, 각 패널위원 및 피소 당사국에게 첫 번째 입장을 전달한다.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의 첫 번째 입장 접수일 후 21일 이내에, 각 패널위원 및 제소 당사국에게 첫 번째 입장을 전달한다.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첫 번째 입장 제출 후 서면 반박 입장을 제출할 기회를 갖는다.

12. 당사국은 질문에 대한 반박이나 답변의 목적상 필요한 증거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첫 번째 서면 입장에서 모든 사실적 근거를 패널에게 제출한다.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이 규칙에 대한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13. 요청, 통보 또는 제10호나 제11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패널절차 관련 문서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그 문서의 사본을 모사전송, 이메일 또는 그 밖의 전자 통신 수단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14. 당사국은 변경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문서를 전달함으로써 모든 요청, 통보, 서면 입장 또는 패널절차와 관련된 그 밖의 문서에 있어서 사무적 성격의 경미한 오류를 언제라도 수정할 수 있다.

심리

15. 규칙 제2호에 따라 설치된 일정표는 양 당사국이 패널에게 사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최소 1회의 심리를 규정한다.

16. 패널의 심리에서, 각 당사국은 사건의 사실관계 및 주장을 제출하는 기회를 갖는다. 제소 당사국은 입장을 우선 표명한다. 양 당사국에게 최종 진술의 기회가 부여되며, 제소 당사국이 진술을 우선 제출한다.

17. 양 당사국은 패널 심리에서 이루어진 질문에 대한 자국의 구두진술 및 답변 서면본을 패널이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18. 심리는 제소 당사국 및 피소 당사국에게 사건을 제출할 동일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패널에 의하여 수행된다.

19. 패널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비공개 회의로 심리를 개최한다.

정보의 이용가능성

20. 규칙 제21호 및 제22호에 따라, 각 당사국의 서면 입장, 구두진술의 서면본 및 패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공중에게 이용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21. 개인 사생활 또는 특정한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필수적인 비밀유지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도에서, 당사국은 자국의 서면입장에 포함되는 특정 정보를 비밀유지 취급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2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하여 제출한 정보를 비밀정보로 취급한다. 한쪽 당사국이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대중에 공개될 수 있는 자국의 서면 입장에 포함된 비밀이 아닌 정보의 요약을 패널 및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23. 제20.11조제1항에 따라 양 당사국에게 제출된 최초 보고서 및 모든 의견은 비밀이다.

2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전문가, 통역사, 번역사 및 법정 서기(지정된 기록원)를 포함한 패널절차와 관련된 자국의 개인이 패널절차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

정보 수집

25. 양 당사국은 패널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정보에 대한 패널의 모든 요청에 신속하고 충분하게 응답한다.

26.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자체 발의로, 패널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하거나, 의견제공 요청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조건에 따른다. 패널은 각 당사국에 자신이 받는 모든 의견,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며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보고서

27. 패널은 제20.11조제1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여, 양 당사국에게 최초 보고서를 제출한다.

28. 패널의 최초 및 최종 보고서는 양 당사국이 임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초안이 작성된다. 패널 보고서에 표현된 개별 패널위원의 의견은 익명이다.

장소

29. 패널 심리 장소는 양 당사국 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장소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하며 첫 번째 심리는 피소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보수 및 비용의 지불

30. 패널은 기록을 유지하고 보조인, 지정된 기록원 또는 규칙 제7호에 따라 패널이 보유하는 그 밖의 개인에게 지불된 비용을 포함하여, 절차와 관련되어 발생한 모든 일반 비용에 대한 최종 결산보고를 한다.

부속서 20-나의 첨부문서
분쟁해결패널절차에 대한 모범 절차규칙

분쟁해결패널 시간표[90]

XX/XX/XXXX에 설치된 패널

가. 양 당사국의 최초 서면입장 접수

1) 제소 당사국: 14일

2) 피소 당사국: 21일

나. 양 당사국의 서면 반박 입장 접수: 10-25일

다. 양 당사국과의 최초 심리일: 20-45일

라. 양 당사국에 최초 보고서 제출: 60-90일

마. 최초 보고서에 대한 양 당사국의 의견제시 마감시한: 14일

바. 양 당사국에 최종 보고서 제출: 31일

총 시간: 170-240일

[90] 추가 심리 및 입장제출을 위한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제 21 장
제도 규정

제 21.1 조
접촉선

1.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접촉선을 지정한다. 특정 접촉선 또는 조정자가 다른 장에 따라 지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처럼 지정된 접촉선은 이 협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다룬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의 접촉선은 그 사안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공무원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한다.

제 21.2 조
협력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 또는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의한다.

제 21.3 조
공동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한국의 통상장관과 호주의 통상장관 또는 그들이 각각 지명하는 자가 공동의장이 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는

   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한다.

   나. 부속서 21-가의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공동위원회 산하의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 그리고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그 밖의 기구의 업무를 감독한다.

   다.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투자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라. 제20.7조에 따라 이 협정상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분쟁의 해결을 추구한다. 그리고

   마.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

3. 공동위원회는

   가. 임시 및 상설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나. 각 당사국의 비준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모든 개정 또는 그 밖의 수정을 검토 및 결정할 수 있다.

   다. 적절한 경우,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내릴 수 있다.

   라. 자신의 절차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마.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이내에 회합하고, 그 후 3년간 매년, 그 이후에는 상호 결정하는 대로 회합한다.

제 21.4 조
위원회 및 작업반

1. 부속서 21-가의 제1항 및 제3항에 명시된 위원회 및 작업반은 공동위원회의 산하에 설치된다.

2. 설치된 위원회 또는 작업반의 회의의 구성, 기능 및 빈도는 이 협정의 관련 장에서 규정된다. 위원회 및 작업반은 양 당사국의 관련 공무원이 공동의장이 된다. 위원회 및 작업반의 회의는 양 당사국이 공동 합의한 장소 및 날짜에 소집되고 직접 또는 양 당사국이 공동 결정한 그 밖의 모든 수단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다.

3. 공동위원회는 자신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위원회나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4. 공동위원회산하에 있는 위원회 및 작업반은 자신의 회합에 앞서 충분히 자신의 일정 및 의제를 공동위원회에 알린다. 그들은 공동위원회의 각 정기 회합에서 자신의 활동을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관의 창설 또는 존재는 어느 한쪽 당사국이 어떠한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직접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5. 공동위원회는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관에 할당된 임무를 변경 또는 수행하기로 결정하거나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관을 해산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6. 양 당사국은 임시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모든 임시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관의 회의의 구성, 기능 및 빈도는 양 당사국이 결정한다.

제 21.5 조
의사 결정

공동위원회와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 ·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상호 동의로 정한다.

부속서 21-가
위원회 및 작업반

1. 설치된 위원회는

   가. 제2.11조(상품무역위원회)에 따른 상품무역위원회

   나. 부속서 3-나에 따른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다. 제4.12조(원산지 규정 및 무역 원활화 위원회)에 따른 원산지 규정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

   라. 제8.16조(금융서비스 위원회)에 따른 금융서비스 위원회

   마. 제9.25조(통신 위원회)에 따른 통신 위원회

   바. 제13.12조(지식재산 위원회)에 따른 지식재산 위원회

   사. 제16.11조(농업 협력 위원회)에 따른 농업 협력 위원회, 그리고

   아. 제16.19조(에너지 및 광물 자원 협력 위원회)에 따른 에너지 및 광물 자원 협력 위원회

2. 당사국이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임시 위원회는

   가. 제17.3조제2항에 따른 임시 노동위원회, 그리고

   나. 제18.6조제2항에 따른 임시 환경위원회

3. 설치된 작업반은

   가. 부속서 7-가(전문직 서비스)의 제3항에 따른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

4. 당사국의 요청으로 설치될 수 있는 임시 작업반은

   가. 제5.9조제4항에 따른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임시 작업반, 그리고

   나. 부속서 7-나의 제16조(제도적 장치)에 따른 임시 시청각 공동제작 위원회

제22장
일반적 규정과 예외

제22.1조
일반적 예외

1. 제2장(상품 무역),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4장(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5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및 제16장(협력)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0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과 1994년도 GATT 제20조사호가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및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에 적용된다는 것을 양해한다.

2. 제7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9장(통신), 제10장(자연인의 이동) 및 제15장(전자상거래)[91]의 목적상, GATS 제14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양 당사국은 GATS 제14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3. 제11장(투자)의 목적상, 그러한 조치가 투자 간 또는 투자자 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을 구성하거나 국제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나.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부과된 조치, 또는

라.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전과 관련된 조치로서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가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과 라호에 언급된 조치가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및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4.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91] 이 조는 전자적 전송이 상품 또는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제22.2조
필수적 안보[92]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판단하는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

나. 당사국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의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1) 핵분열성 및 핵융합성 물질 또는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

2) 무기, 총포탄 및 전쟁 도구들의 거래와 그 밖의 제품과 재료에서의 그러한 거래와 관련되거나 군사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되는 조치, 또는

3) 전시 또는 국제 관계에서의 그 밖의 비상시에 취해지는 조치, 또는

다. 당사국이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2. 제1항나호 및 다호에 따라 조치를 하는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취해진 조치와 그 종료에 대해 공동위원회에 통보한다.

제22.3조
과세

1. 이 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다음의 규정은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가. 제2장(상품 무역)

나. 제7.2조(내국민 대우)와 제8.2조(내국민 대우)

다. 그 과세조치가 간접세인 경우, 제7.3조(최혜국 대우)와 제8.3조(최혜국 대우)

라. 그 과세조치가 간접세인 경우, 제11.3조(내국민 대우)와 제11.4조(최혜국 대우), 그리고

마. 제11.9조제2항부터 제11.9조제9항까지

[9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제 11 장(투자)의 제 2 절에 따라 개시된 중재절차에서 이 장을 원용하는 경우, 그 사안을 심리하는 중재판정부는 그 예외가 적용됨을 판정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서 언급된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조세 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이익에 대한 이 협정의 최혜국 대우 의무

나.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

다.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라.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개정이 위의 어떠한 조들에 대해서도 그 개정 시점에서 그 규정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개정

마. 직접세에 대한 그 조에서의 제한과 상관없이 GATS 제14조라호에서 허용된 대로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세금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모든 과세조치의 채택 또는 집행, 또는

바. 연금신탁, 퇴직기금, 또는 연금, 퇴직연금 또는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그 밖의 약정에 대한 납입이나 그 소득과 관련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당사국이 그러한 신탁, 기금 또는 그 밖의 약정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할권, 규제 또는 감독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규정

4. 제11.16조(중재 청구 제기)는 수용이라고 주장되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5. 제11.7조(수용 및 보상)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항에 따라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어떠한 투자자도 제11.7조를 청구의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 과세조치에 대하여 제11.7조를 원용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제11.16조제2항에 따른 의사통보를 할 때에 그 과세조치가 수용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권한 있는 당국에 우선 회부하여야 한다. 권한 있는 당국이 그 문제를 검토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검토에 동의하였으나 그러한 회부로부터 180일의 기간 이내에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하는 데에 동의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제11.16조제3항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6.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상의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과 조세협약 간에 과세조치와 관련된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그 조세협약이 우선한다.

7. 어느 한쪽 당사국이 이 협정과 조세협약 간에 과세조치와 관련된 불합치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권한 있는 당국은 즉시 협의한다. 이 조의 목적상,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그리고

나. 호주의 경우, 재무부

8. 이 조의 목적상, 과세조치들은 어떠한 관세 또는 수입관세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2.4조
정보의 공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게 되거나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2.5조
비밀유지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면, 정보를 받는 그 당사국은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그 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명시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정보의 공개가 당사국의 법적 요건 충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의 명시적 서면허가 없이는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정보를 받은 당사국은 그러한 공개가 있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제 23 장
최종규정

제 23.1 조
부속서, 부록 및 각주

이 협정의 부속서, 부록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23.2 조
발효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3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제 23.3 조
개정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통합되거나 이 협정에서 언급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제 23.4 조
종료

1.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

2.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전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어느 한쪽 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 중에서 제1항에서 규정된 날 이후에 종료되어야 할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를 개시할 것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당사국이 자국의 요청을 전달한 후 30일 이내에 개시된다.

3. 이 조는 부속서 7-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3.5 조
정본

이 협정의 한국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한 정본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 년 4 월 8 일 서울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호주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I
주해

1. 이 부속서의 당사국의 유보목록은 제7.6조(비합치 조치 –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제11.12조(비합치 조치 – 투자)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그 당사국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7.2조(내국민 대우 – 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1.3조(내국민 대우 – 투자)

나. 제7.3조(최혜국 대우 – 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1.4조(최혜국 대우 – 투자)

다. 제7.4조(시장접근 – 국경 간 서비스무역)

라. 제7.5조(현지주재 – 국경 간 서비스무역)

마. 제11.9조(이행요건 – 투자), 또는

바. 제11.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 투자)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7.6조제1항가호(비합치 조치 –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제11.12조제1항가호(비합치 조치 – 투자)에 따라, 열거된 조치(들)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들)을 명시한다.

다. **정부수준**은 열거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라. 한국의 경우,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호주의 경우, **조치 근거**는 유보된 비합치 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말한다. **조치** 또는 **조치 근거**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마. **유보내용**은, 한국의 경우, 이 협정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를, 그리고 유보된 **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그리고 **유보내용**은, 호주의 경우, 유보된 비합치 조치를 규정한다.

3. 제7.6조제1항가호(비합치 조치 –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제11.12조제1항가호(비합치 조치 – 투자)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한국의 경우에는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명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호주의 경우에는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명시된 비합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현지주재와 내국민 대우는 별개의 규율이며 (거주요건과 같은) 현지주재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5.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7.2조(내국민 대우 –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7.3조(최혜국 대우 – 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7.5조(현지주재 – 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대하여 행해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목록의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11.3조(내국민 대우 – 투자), 제11.4조(최혜국 대우 – 투자) 또는 제11.9조(이행요건 – 투자)에 대한 유보목록의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6. 한국의 경우, "외국인"이란 외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

분야	건설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법률 제12012호, 2013.8.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24616호, 2013.06.1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국토교통부령 제10호, 2013.06.17)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11782호, 2013.5.2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별표 1)(대통령령 제24417호, 2013.3.2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행정부령 제3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에서 건설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그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분야	건설기계 및 장비 관련 리스 · 대여 · 정비 · 수리 · 매매 및 폐기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조치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법률 제11919호, 2013.7.1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건설기계 및 장비와 관련된 리스 · 대여 · 정비 · 수리 · 매매 및 폐기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 자동차 정비·수리·판매·폐기 및 검사 서비스, 자동차등록 번호판교부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 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자동차관리법 제20조, 제44조, 제45조 및 제53조(법률 제11929호, 2013.7.1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3조, 제87조 및 제111조(국토교통부령 제24호, 2013.9.6)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자동차관리서비스(중고차판매·정비·해체 및 재활용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하고, 각 경우에 맞게,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지정검사시설"로 지정되어 자동차검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되어 등록번호판 제작·교부 및 봉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분야	유통서비스 – 담배 및 주류의 도·소매 유통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담배사업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대통령령 제24519호, 2013.4.26)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7조의3(기획재정부령 제131호, 2010.3.3) 주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43조(법률 제11873호, 2013.6.7) 주세법 시행령 제9조 및 제56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2-68호, 2012.10.1)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3-15호, 2013.4.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담배 도매(수입 포함) 또는 소매 유통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지정된 담배소매인만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우편 또는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담배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최소한 50미터가 되어야 한다. 주류 도매 유통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관련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된다.

분야	농축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조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법률 제11535호, 2012.12.1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 2(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7호, 2013.5.30)
유보내용	투자 외국인은 가. 벼 또는 보리 재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는 투자할 수 없다. 또는 나. 육우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지분 50퍼센트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분야	사업서비스 – 안경사(안경사 및 검안)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률 제11860호, 2013.6.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보건복지부령 제193호, 2013.4.17)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으로서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한 자만이 안경사 또는 검안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다.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1인은 1개의 영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분야	도 · 소매 유통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약사법 제42조 및 제45조(법률 제12074호, 2013.8.13) 약사법 시행령 제31조의2(대통령령 제24479호, 2013.3.23)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6조(대통령령 제24479호, 2013.3.23)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제4조 및 제12조(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3호, 2013.4.18) 의료기기법 제15조(법률 제12107호, 2013.8.1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총리령 제1016호, 2013.3.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법률 제11508호, 2012.10.2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총리령 제1010호, 2013.3.23) 식품위생법 제24조, 제36조 및 제37조(법률 제11819호, 2013.5.2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대통령령 제24800호, 2013.10.1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36조(별표14)(총리령 제1041호, 2013.10.2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법률 제11984호, 2013.7.30)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도매업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이 다음과 관련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수입업 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가. 의약품 및 관련 물품 나. 의료기기, 또는 다. 건강 기능성 식품(식품보조제 포함) 다음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가.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운반 · 판매 및 보존(냉장 및 냉동저장) 나. 식품공급 서비스 다. 식품검사 서비스, 또는 라. 마약류 도소매 유통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입된 지정 한약재의 도매유통에 대한 수급조절을 한다. 특정 주류 판매업소와 마약류 도 · 소매 유통업은 관련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야	의약품 소매 유통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약사법 제20조 및 제21조(법률 제12074호, 2013.8.13) 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2(대통령령 제24479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의약품 소매 유통서비스(한약제 유통 포함)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약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인은 1개의 약국만 설치할 수 있고, 회사의 형태로 약국을 설립할 수 없다.

분야	운송서비스 – 철도운송 및 부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시장접근(제7.4조)
조치	철도사업법 제5조, 제6조 및 제12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법률 제12025호, 2013.8.6) 철도건설법 제8조(법률 제12023호, 2013.8.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0조, 제21조, 제26조 및 제38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현행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개괄적으로 명시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국민이 설립한 한국 국적의 법인(한국 국적의 주주가 100퍼센트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만이 2005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한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 중앙 또는 지방정부나 한국철도시설공단만이 철도건설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정부소유 철도시설(고속철도 포함)을 유지 및 보수할 수 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은 철도건설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분야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택시와 정기도로여객운송서비스 제외)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조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12020호, 2013.8.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국토교통부령 제35호, 2013.11.7) 궤도운송법 제4조(법률 제11647호, 2013.3.2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3조(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택시와 정기도로여객운송서비스를 제외한 도로여객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 당해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 국제해상화물운송 및 해상운송 보조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해운법 제24조 및 제33조(법률 제12092호, 2013.8.13)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9조, 제22조 및 제23조(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3.24) 도선법 제6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및 제31조(법률 제11756호, 2013.4.5)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국제해상화물운송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은 한국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해운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선박투자회사도 한국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해운중개서비스, 해상대리서비스 및 선박유지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은 한국 상법에 명시된 회사여야 하고 해운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한국 국민만이 해상도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분야	운송서비스 – 항공운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11.10조)
조치	항공법 제3조, 제6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32조 및 제135조(법률 제12026호, 2013.8.6) 항공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5조, 제278조, 제278조의3, 제296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국토교통부령 제569호, 2013.2.15)
유보내용	투자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정기 또는 부정기 국내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하거나 한국 국적의 항공사로서 국제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언급된 인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 또는 마.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이거나 외국 국민이 임원의 절반 이상인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항공기를 소유한 자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자는 당해 항공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등록은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해당하는 인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 특수항공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항공법 제3조, 제6조 및 제134조(법률 제12026호, 2013.8.6) 항공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298조 및 제299조의2(국토교통부령 제569호, 2013.2.15)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항공기 사용서비스 또는 글라이더 견인, 낙하산 투하, 항공건설, 헬리콥터를 이용한 벌채 그리고 항공 관광과 같은 부정기 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소유 또는 임차한 항공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항공기를 등록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해당하는 인이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러한 인이 지배하고 있는 기업, 또는 마.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이거나 외국 국민이 임원의 절반 이상인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항공기 사용 서비스는 항공기를 사용하는 서비스로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목적이 아닌 요청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이며 항공화재진압 · 산림화재관리 · 항공광고 · 비행훈련 · 항공지도제작 · 항공조사 · 항공살포 · 항공촬영 및 그 밖의 항공농업활동, 그리고 항공순찰 및 관측을 포함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 도로운송지원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 및 제37조(법률 제12020호, 2013.8.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국토교통부령 제35호, 2013.11.7) 주차장법 제12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도로교통법 제36조(법률 제12045호, 2013.8.1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주차장 서비스, 버스터미널 운영 서비스 또는 자동차 견인 및 보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경우에 맞게, 국토교통부장관, 지역 경찰서장 또는 시장 및 군수의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주차장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주차장 설치를 통보하여야 한다).

분야	쿠리어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항공법 제139조(법률 제12026호, 2013.8.6) 항공법 시행규칙 제306조(국토교통부령 제569호, 2013.2.1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24조 및 제29조(법률 제11933호, 2013.7.1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34조, 제41조의2(국토교통부령 제19호, 2013.7.1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우편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업서류송달서비스를 포함한 국제 쿠리어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쿠리어서비스 공급자는 해당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면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허가기준 및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기존의 국내 쿠리어 사업을 인수한 인은 피인수자가 보유한 면허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조건 하에 영업을 영위하는 한, 신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분야	통신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21조 및 제87조(법률 제12035호, 2013.8.13)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4조(법률 제5385호, 1997.8.28) 전파법 제13조 및 제20조(법률 제11712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기간통신서비스 허가 또는 별정통신서비스를 위한 등록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 기간통신서비스 허가는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부여되거나 보유되지 아니한다.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기간통신서비스 공급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한다. 이에 더하여, KT에 있어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그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이 KT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퍼센트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한국은 다음을 허용한다. 가. 의제외국인이 한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퍼센트까지 보유하는 것. 다만, KT와 SK텔레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나. 의제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최대 100퍼센트까지 보유한 한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허가받은 공중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으로 공중통신서비스를 국경 간 공급할 수 없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 "의제외국인"이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관련 한국 법률이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최대주주이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퍼센트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퍼센트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법률 제12035호, 2013.8.13)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한 공급자를 말한다.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법률 제12035호, 2013.8.13)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하지 아니하고(그러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는 소유할 수 있다)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설비를 통하여 기간통신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라.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3호(법률 제11690호, 2013.3.23)에 따라, "전송설비"란 송신 지점과 수신 지점을 연결하는 유선 또는 무선 전송설비(회선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분야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조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법률 제11866호, 2013.6.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7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66조 및 제68조(대통령령 제23919호, 2012.6.2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부동산 중개 서비스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의료기기 관련 소매·리스·임대 및 수리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조치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제17조(법률 제12107호, 2013.8.1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4조(총리령 제1016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의료기기와 관련된 소매·리스·임대 또는 수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대여 서비스 – 자동차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조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법률 제12020호, 2013.8.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4조(국토교통부령 제35호, 2013.11.7)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자동차대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과학조사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조치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 제7조 및 제8조(법률 제12091호, 2013.8.13)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법률 제10524호, 2011.4.4)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허가 또는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한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지배하지 아니하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분야	전문직 서비스 – 법률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변호사법 제4조, 제7조, 제21조, 제21조의2, 제34조, 제45조, 제58조의6, 제58조의22 및 제109조(법률 제11825호, 2013.5.28) 법무사법 제2조, 제3조 및 제14조(법률 제8920호, 2008.3.21) 공증인법 제10조, 제16조 및 제17조(법률 제11823호, 2013.5.28)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만이 법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변호사만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형태의 법적 실체를 개설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국에서 개업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사무소는 당해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개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한다. 공증인의 사무소는 당해 공증인이 개업하는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한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 II의 한국 유보목록 중 법률서비스 – 외국법자문사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분야	전문직서비스 – 노무 자문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조치	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7조의4(법률 제10321호, 2010.5.25)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9조(대통령령 제24447호, 2013.3.23)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0조(고용노동부령 제78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노무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노무사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무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은 2인 이상(설립자인 자연인을 포함한다)의 공인노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분야	전문직서비스 – 변리사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변리사법 제3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법률 제11962호, 2013.7.30)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만이 변리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변리사만이 개인사무소 또는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변리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은 이러한 형태의 법적 실체에 투자할 수 없다. 변리사 1인은 1개의 사무소만 설립할 수 있다.

분야	전문직서비스 – 회계 및 감사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7조, 제12조, 제18조 및 제23조(법률 제10866호, 2011.7.2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법률 제11845호, 2013.5.28)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한국에 설립한 개인사무소,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유한회사)만이 회계 및 감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공인회계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는 감사서비스는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에 속해 있는 한국 공인회계사만이 공급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II 한국의 유보목록 중 전문직서비스 – 외국공인회계사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분야	전문직서비스 – 세무사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세무사법 제6조, 제13조, 제16조의3 및 제20조(법률 제11610호, 2013.1.1)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대통령령 제24824호, 2013.11.5)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0조 및 제22조(국세청 훈령 제1761호, 2009.8.24)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한국에 설립한 세무사무소,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조정서비스 및 세무대리서비스를 포함한 세무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세무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조정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Ⅱ 한국의 유보목록 중 전문직서비스 – 외국세무사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분야	전문직서비스 – 통관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관세사법 제3조, 제7조 및 제9조(법률 제10570호, 2011.4.8)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관세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관세사, 그러한 관세사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관세사법에 의하여 통관업 허가를 받은 법인만이 통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통관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 서비스 –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조치	건축사법 제23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건축사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3조(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법률 제12299호, 2014.1.21) 기술사법 제6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법률 제11928호, 2013.7.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및 제28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1조 및 제108조(대통령령 제24390호, 2013.2.20)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국토교통부령 제4호, 2013.4.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54조(법률 제11943호, 2013.7.1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45조, 제46조 및 제47조(대통령령 제24596호, 2013.6.1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온천법 제7조(법률 제11896호, 2013.7.1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법률 제11782호, 2013.5.22)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분야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 서비스 – 산업안전·보건기관 및 자문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52조의4(법률 제11882호, 2013.6.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대통령령 제24684호, 2013.8.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136조의8(고용노동부령 제86호, 2013.8.6)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관리 또는 진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및 지도, 그리고 작업환경의 개선에 대한 평가 및 지도 등 산업안전 또는 위생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 전광판방송서비스 및 옥외광고서비스
관련의무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방송법 제13조 및 제73조(법률 제12093호, 2013.8.1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44조(대통령령 제24632 호, 2013.6.2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외국 국민 또는 외국기업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인 한국 국민은 전광판방송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 또는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전광판방송프로그램의 최소 20퍼센트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제공한 비상업용 공익광고물로 편성되어야 한다. 옥외광고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또는 측량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외국 건축사와 건축전문가로 등록하고 건축사무소를 설치한 한국 건축사 자격자 간의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 직업알선서비스, 근로자 공급 및 근로자 파견서비스 및 선원교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제33조(법률 제11048호, 2011.9.15)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3조(대통령령 제24076호, 2012.8.31)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36조(고용노동부령 제72호, 2012.12.2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법률 제11668호, 2013.3.2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23853호, 2012.6.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및 제5조(고용노동부령 제64호, 2012.8.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선원법 제109조, 제110조, 제112조,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제142조 및 제143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5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유료직업소개서비스, 근로자 공급서비스 또는 근로자 파견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투명성 목적상, 2013년 10월 29일 현재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32개 사업으로 한정되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라 파견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지방해양수산청만이 선원인력공급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인은 한국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만이 선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분야	조사 및 경비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경비업법 제3조 및 제4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대통령령 제24419호, 2013.3.23)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행정부령 제20호, 2013.10.22)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한국 내에서 경비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투명성 목적상, 한국에서는 다음 5가지 종류의 경비서비스만이 허용된다. 가. 시설경비 나. 호송경비 다. 신변보호 라. 기계경비, 그리고 마. 특수경비

분야	간행물 관련 유통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조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3(법률 제11048호, 2011.9.1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대통령령 제24020호, 2012.8.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1호, 2012.7.27)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국내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은 필요시 심의의 대상이 된다.

분야	운송서비스 – 항공기 유지 및 정비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조치	항공법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법률 제12026호, 2013.8.6)
	항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04조 및 제305조(국토교통부령 제569호, 2013.2.15)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항공기 유지 및 정비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교육서비스 – 고등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시장접근(제7.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조치	고등교육법 제3조, 제4조, 제32조, 제42조 및 제43조(법률 제12036호, 2013.8.1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대통령령 제24847호, 2013.11.20)
	사립학교법 제3조, 제5조, 제10조 및 제21조(법률 제11622호, 2013.1.2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3(대통령령 제24665호, 2013.7.2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제1조 및 제2조(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사립고등교육기관 이사정수의 절반 이상은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기관 기본재산액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출연하는 경우, 그러한 교육기관의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까지 외국 국민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고등교육기관의 기본재산"이란 부동산,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및 학교법인의 회계년도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학교법인만이 한국에서 고등교육기관(부속서II의 한국 유보목록에 열거된 기관의 유형은 제외)을 설립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의료인 · 약사 · 수의사 · 한약사 · 의료기사 및 유아 · 초등 · 중등교원을 위한 고등교육 및 수도권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 분야의 연간 총 학생정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수도권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포함한다.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은 한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만이 설립할 수 있다. 방송을 통하여 대중에게 고

등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고등교육기관은 한국 중앙정부만이 설립할 수 있다.

분야 교육서비스 – 성인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시장접근(제7.4조)

조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의2 및 제13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평생교육법 제30조,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법률 제11770호, 2013.5.2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법률 제11535호, 2012.12.11)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 1(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7호, 2013.5.30)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에서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성인교육기관의 유형은 다음에 한정된다.

가. 평생 및 직업교육 관련 성인대상 학원, 그리고

나.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학력 인정 또는 학위 수여 목적 이외의 성인평생교육시설로서

1) 사업장, 비정부기구, 학교 및 언론기관에 부설된 교육시설

2) 지식 및 인력의 개발과 관련된 교육시설, 그리고

3) 온라인 평생교육시설이면서 성인대상으로 설립된 것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성인대상 학원이란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10명 이상에게 평생 또는 직업교육 관련 과목에 관한 교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성인대상 학원에 강사로 고용되는 외국 국민은 학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 학력소지자로서 한국 내에 거주하여야 한다.

분야	교육서비스 – 직업능력개발 훈련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조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 제32조 및 제36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대통령령 제24628호, 2013.6.2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 및 제18조(고용노동부령 제57호, 2012.6.8)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직업능력개발 훈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수의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수의사법 제17조, 제22조의2,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법률 제11354호, 2012.2.22) 민법 제32조(법률 제11728호, 2013.4.5)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 내 동물진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사무소를 설치한 면허 받은 수의사만이 수의 또는 수생동물 질병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분야	환경서비스 – 폐수처리 서비스, 폐기물관리 서비스, 대기오염처리 서비스,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토양 및 지하수 정화 서비스 및 유독화학물질 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조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법률 제11915호, 2013.7.1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법률11713호, 2013.3.23)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법률 제11464호, 2012.6.1)
	지하수법 제29조의2(법률 제11803호, 2013.5.22)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법률 제11750 호, 2013.4.5)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폐기물관리법 제25조(법률 제11965호, 2013.7.3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24543호, 2013.5.28)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분야란에 열거된 환경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공연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조치	공연법 제6조 및 제7조(법률 제11048호, 2011.9.15)
	공연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대통령령 제23759호, 2012.5.1)
	공연법 시행규칙 제4조(문화체육관광부령 제94호, 2011.11.2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법무부령 제799호, 2013.10.10)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한국 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분야 뉴스제공(뉴스통신사)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5, 제16조 및 제28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대통령령 제24183호, 2012.11.20)

전파법 제20조(법률 제11712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는 연합뉴스사와 같이 무선국 허가를 받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와의 계약 체결을 통한 방법으로만 한국에서 뉴스통신을 공급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한국에서 뉴스통신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

가. 외국정부

나. 외국인

다. 한국 국민이 아니거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인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로 되어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라. 외국인이 25퍼센트 이상의 비율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뉴스통신사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 또는 편집인, 또는 연합뉴스사 또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또는

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한국 국민

외국 뉴스통신사의 한국 내 지사 또는 지국의 설립은 기사 취재 목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지사 또는 지국은 한국 내에서 뉴스통신을 배포할 수 없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무선국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나.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분야	생물학적 제제 제조
관련의무	이행요건(제11.9조)
조치	약사법 제42조(법률 제12074호, 2013.8.1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총리령 제1022호, 2013.3.23)
유보내용	투자 혈액제제 제조자는 한국의 혈액관리기구로부터 원료혈액 물질을 조달하여야 한다.

분야	정기간행물의 발행(신문 제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9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대통령령 제23807호, 2012.5.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 국민이 아닌 인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회사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한국에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나. 한국의 국민이 아닌 인이 그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로 되어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다. 외국인이 50퍼센트 이상의 비율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외국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지사 또는 지국을 한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협정 발효일부터 그러한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은 호주 영역 내에서 편집된 원어로 된 정기간행물에 한하여 한국 내에서 인쇄 및 배포할 수 있다.

분야	유통서비스 – 농축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시장접근(제7.4조)
조치	양곡관리법 제12조(법률 제11641호, 2013.3.22) 축산법 제30조 및 제34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종자산업법 제142조(법률 제11704호, 2013.3.23) 사료관리법 제6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인삼산업법 제20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법률 제11535호, 2012.12.1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 2(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7호, 2013.5.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7조 및 제43조(법률 제12059호, 2013.8.13)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4조 및 제20조의2(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9호 2013.5.16)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외국인은 육류도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축산업협동조합만이 한국 내에서 가축시장을 개설 및 관리할 수 있다. 지방정부만이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만이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7.2조(내국민 대우) 및 제7.4조(시장접근)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관세율할당의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방송법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48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법률 제12093호, 2013.8.13) 방송법 시행령 제57조(대통령령 제24763호, 2013.9.2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법률 제12093호, 2013.8.1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외국국민 또는 외국기업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인 한국 국민은 지상파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전송망사업자 ·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나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모든 이사는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자 · 전송망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한국 정부, 지방정부 또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만 부여되거나 보유될 수 있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한국 정부 · 지방정부 또는 한국의 인에 대해서만 부여되거나 보유될 수 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 · 홈쇼핑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허가를 통하여 부여되는 반면, 전송망사업자 ·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 · 홈쇼핑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지 아니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등록을 통하여 부여된다.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에게는 다음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

나. 합하여 위성방송사업자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33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 또는

다. 합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전송망사업자 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지 아니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

투명성 목적상, 방송사업자가 종교적이거나 선교적인 내용을 주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방송법시행령 제3조의 "특수관계자" 포함)은 합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제한은 한국 정부와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예를 들어,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방송주식회사(MBC))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국 콘텐츠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채널별로 매 분기 방송시간의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채널별로 매 분기 방송시간의 4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 그리고

다.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채널별로 매 분기 방송시간의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

방송사업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가. 영화: 해당 채널의 연간 방송시간의 2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이하

나. 애니메이션: 해당 채널의 연간 방송시간의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 그리고

다. 대중음악: 해당 채널의 연간 방송시간의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그러나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연간 영화 또는 애니메이션 편성시간의 4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최소 한국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의 국내 제작 영화 및 애니메이션을 포함해야 한다.

한국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분야별 외국 콘텐츠 분기별 전체 편성시간의 60퍼센트 이하가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외국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1개국 콘텐츠 한도라 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 "종합편성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란 보도 · 오락 · 드라마 · 영화 · 음악 등을 조합하여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나. "의제외국인" 이란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그리고

다. "위성방송사업자" 는 외국에 등록된 위성의 설비를 이용 또는 임차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분야	에너지산업 –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배전 및 전력 판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1]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법률 제11845호, 2013.5.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7조(대통령령 제24697호, 2013.8.27)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11535호, 2012.12.1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외국인투자통합공고 별표(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102호, 2013.5.27)
	공공적법인의 지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0-17호, 2000.9.28)
	금융투자업규정 제6-2조(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40호, 2013.12.4)
유보내용	투자
	한국전력공사 발행주식의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 설비를 포함한 발전설비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한국 영역 내 전체 발전설비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사업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1] 부속서Ⅱ에 기재된 한국 유보목록의 열 번째 유보항목 가항은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야	에너지 산업 – 가스 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2]
조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법률 제11845호, 2013.5.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법률 제11845호, 2013.5.28)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11535호, 2012.12.11)
	한국가스공사정관 제11조(2013.8.9)
유보내용	투자
	외국인은 총합하여 한국가스공사 지분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2] 부속서Ⅱ에 기재된 한국 유보목록의 열 번째 유보항목 가항은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I
호주의 유보목록

호주 유보목록을 위한 서설

호주는 다음 의무에 반하여 2005년 1월 1일에 존재하였으나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 유보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정부 수준의 모든 비합치 조치를 유지하고 이 유보목록에 추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제7.2조(내국민 대우 – 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1.3조(내국민 대우 – 투자)

나. 제7.3조(최혜국 대우 – 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1.4조(최혜국 대우 – 투자)

다. 제7.5조(현지주재 – 국경 간 서비스무역)

라. 제11.9조(이행요건 – 투자), 또는

마. 제11.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 투자)

분야	레크리에이션 · 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 영화상영서비스
관련의무	이행요건(제11.9조) 시장접근(제7.4조)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7조 및 제40조(법률 제11902호, 2013.7.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24036호, 2012.8.1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 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각 상영관에서 연간 73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정부수준 중앙 및 지역

조치근거 1975년 외국인 취득 및 인수법(연방)(FATA), 1989년 외국인 취득 및 인수규정(연방), 1998년 금융부문(지분 보유)법(연방) 및 장관성명을 포함한 호주의 외국인투자 정책

1994년 토지법(퀸즐랜드)
1988년 외국인 토지소유 등록법(퀸즐랜드)

유보내용 투자

연방

(가) 다음의 투자는 호주정부의 거부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부에 대한 통보가 요구될 수 있다[1].

가. 투자 액수를 불문하고, 외국인[2]의 언론분야에 대한 5퍼센트 이상의 투자

나. 다음 분야에서 자산가치가 2억4천8백만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기존[3] 호주 사업 또는 지정 회사[4]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1) 통신부문

2) 호주 내 또는 호주 착발로 제공되는 공항, 항구설비, 철도기반시설, 국제 및 국내 항공 및 선적 서비스를 포함하는 운송부문

3) 호주 또는 그 밖의 방위군에게 대한 훈련 또는 인적자원 공급, 또는 군수물품, 장비 또는 기술의 제조 또는 공급

4) 군사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장비 또는 기술의 제조 또는 공급

5) 암호화 및 보안 기술과 통신시스템의 개발, 제조 또는 공급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 그리고

6)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의 추출(또는 추출권),

[1] 1975년 외국인 취득 및 인수법(FATA). "투자" 란 외국인 취득 및 인수법 제2절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외국인투자정책에 대한 장관성명에 명시된 활동을 말한다. 준자본 성격을 가지는 부채상품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은 외국인직접투자로 취급될 것이다.

[2] "외국인" 이란 외국인 취득 및 인수법 제5절에 정의된 바에 따라 다음을 말한다.

가. 상시적으로 호주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연인

나. 상시적으로 호주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연인 또는 외국회사가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기업

다. 각각 상시적으로 호주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연인 또는 외국회사인 2인 이상의 인들이 합하여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기업

라. 상시적으로 호주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연인 또는 외국회사가 실질적인 지분을 보유하는 신탁재단의 수탁자, 또는

마. 각각 상시적으로 호주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연인 또는 외국회사인 2인 이상의 인들이 합하여 실질적인 지분을 보유하는 신탁재단의 수탁자

이는 2013년 1월 1일자 금액이다. 매년 1월 1일 이전, 회계연도에 대한 호주국가회계의 GDP 잠재적 물가지수와 연동된다. 협정이 2014년 1월 1일까지 발효되지 아니하면, 이 금액은 발효시에 연동될 것이다.

[3]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기존" 이란 투자가 제안되거나 행해지는 시점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4]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지정 회사" 는 다음을 말한다.

가. 무역회사

나. 금융회사

다. 준주의 회사 관련 유효한 법에 따라 그 준주에서 설립된 회사

라. 최종 회계일에,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되는 자산의 가치의 합이 2억4천8백만 호주달러(유보항목의 나호의 경우) 또는 10억7천8백만 호주달러(유보항목의 다호의 경우)를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외국회사

1) 호주 내에 위치한 토지(그러한 토지에 대한 법적 및 형평법 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2) 채굴권

3) 호주에서 설립된 회사의 지분

마. 최종 회계일에, 호주 회사 또는 호주 회사들의 지주회사인 외국회사로, 그 날짜에 그 호주 회사 또는 호주 회사들의 자산 가치의 합이 2억4천8백만 호주달러(유보항목의 나호의 경우) 또는 10억7천8백만 호주달러(유보항목의 다호의 경우)를 초과하는 경우

바. 최종 회계일에, 이 각주의 라호 또는 마호에 언급된 외국회사의 지주회사인 회사

사. 최종 회계일에, 이 각주 라호에 언급된 종류 또는 종류들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회사로, 그 날짜의 그러한 자산 가치의 합이 그 날짜의 외국 회사와 그 회사의 모든 자회사들의 자산 가치의 합의 절반보다 적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아. 최종 회계일에, 호주 회사 또는 호주 회사들의 지주회사인 외국회사로, 그 날짜에 그 호주 회사 또는 호주 회사들의 자산 가치의 합이 그 날짜 외국 회사와 그 회사의 모든 자회사들의 자산 가치의 합의 절반보다 적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핵설비의 운영

다. 금융부문회사[5]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분야에서 자산가치총액이 10억7천8백만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기존 호주 사업 또는 지정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라. 외국인에 의한 10억7천8백만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가치를 가지는 개발된 비거주 상업부동산의 인수

마. 규모를 불문하고 외국정부투자자의 직접 투자

신고된 투자는 임시명령을 조건으로 거절 및/또는 특정 조건의 준수를 조건으로 승인될 수 있다. 신고가 요구되지 아니하거나 수령되지 아니한 가항부터 마항까지에 기재된 투자는 외국인 취득 및 인수법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A조에 따라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기존 금융부문회사에 대한 허용될 수 없는 주식보유 상황이나 실질적 지배권[6]으로 이어질 외국투자자의 기존 금융부문회사 지분인수나 외국투자자의 약정체결은 거절되거나 특정 사항[7]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다) 이 유보항목에 명시된 조치에 더하여, 부속서 I 또는 부속서 II의 다른 유보항목은 다음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나 그와 관련된 요건을 부과하는 추가 비합치 조치를 규정한다.

가. 텔스트라

나. 국립혈청연구소

다. 콴타스 항공

라. 콴타스를 제외한 호주 국제항공사

마. 도심 토지

바. 연방임대공항

사. 농지

아. 농업, 그리고

자. 해운

퀸즐랜드

특정 임대(투표로 취득) 및 장관 재량의 그 밖의 임대는 임차인이 그 기간 중 최초 7년 동안 직접 임차지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모든 토지 소유권 변동은 등록되어야 하지만, 외국인 토지보유자의 경우에는 규정된 신고를 통하여 토지에 대한 현재 지분과 취득, 토지 지분 처분, 그리고 외국인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외국인에 해당되게 되는 것에 대한 통지를 공개할 추가 의무가 있다.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되며, 기소, 금전적 벌금의 부과 및/또는 토지에 대한 지분이 정부에 몰취될 수 있다.

이는 2013년 1월 1일자 금액이다. 매년 1월 1일 이전 회계연도에 대한 호주국가회계의 GDP 잠재적 물가지수와 연동된다. 협정이 2014년 1월 1일까지 발효되지 아니하면, 이 금액은 발효시에 연동될 것이다.

[5] "금융부문회사" 란 1998년 금융부문(주식보유)법 제3절에 정의된 바에 따라 다음을 말한다.

가. 승인된 예금수령기관,

나. 승인된 보험회사, 또는

다. 이 각주의 가호 또는 나호에 명시된 회사의 지주회사

[6] 1997년 4월 9일자 재무장관 보도자료 제28호를 포함한 외국인투자정책에 대한 장관성명

[7] 1998 년 금융부문(주식보유)법에 정의된 "허용될 수 없는 주식보유상황" 및 "실질적 지배권"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근거	2001년 회사법(연방) 2001년 회사규정(연방)
유보내용	투자 비상장회사의 이사 중 최소 1인은 상시적으로 호주에 거주하여야 한다. 상장회사의 이사 중 최소 2인은 상시적으로 호주에 거주하여야 한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현지주재(제7.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협회법(노던준주) 1991년 협회설립법(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1981년 협회설립법(퀸즐랜드) 1985년 협회설립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1964년 협회설립법(태즈메이니아) 2012년 협회설립개혁법(빅토리아)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노던준주 협회[8]의 설립 신청은 반드시 노던준주의 거주자인 인이어야 한다. 설립된 협회의 임원은 노던준주의 거주자인 인이어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협회의 설립 신청은 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의 거주자인 인이 해야 한다. 설립된 협회의 임원은 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의 거주자인 인이어야 한다. 퀸즐랜드 서기직은 그 직위에 있는 인이 퀸즐랜드 또는 퀸즐랜드 경계에서 65킬로미터 내에 있는 다른 주의 거주자가 아니게 되면 공석이 된다. 설립된 협회의 경영위원회는 서기가 퀸즐랜드 또는 퀸즐

8 "협회"는 무역협회를 포함한다.

랜드 경계에서 65킬로미터 내 있는 다른 주에 거주하는 개인이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설립된 협회의 경영위원회의 위원들은 협회가 협회에 대한 문서 송달을 위하여 지정된 주소를 가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지정된 주소는 문서가 직접 개인에게 송달될 수 있는 주 내의 장소여야 한다. 우체국 사서함은 지정된 주소로 인정될 수 없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설립된 협회의 임원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 거주하는 인이어야 한다.

테즈메이니아

테즈메이니아 거주자가 아닌 인은 설립된 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빅토리아

협회 설립을 신청하는 인은 호주 거주자여야 한다.

설립된 협회의 제1서기와 서기는 호주 거주자여야 하며, 설립을 신청하는 협회의 제1서기는 호주 거주자여야 한다.

합병된 협회의 제1서기는 호주 시민이어야 한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2002년 협동조합법(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2012년 협동조합(연방법채택)법(뉴사우스웨일스) 협동조합법(노던준주) 1997년 협동조합법(퀸즐랜드) 1997년 협동조합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1999년 협동조합법(테즈메이니아) 2013년 협동조합 연방법적용법(빅토리아) 2009년 협동조합법(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모든 호주 주 및 준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하고, 협동조합은 운영되는 각 주 또는 준주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등록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 위치한 사무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의 서기는 호주에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인이어야 한다. 외국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각 주 또는 준주에서 협동조합의 대리인으로 행위할 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외국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각 주 또는 준주에 거주하는 인을 협동조합을 대신하여 모든 통지 및 법률문서의 송달을 받을 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의 이사 중 최소 2인은 호주 거주자여야 한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1963년 파트너쉽법(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1892년 파트너쉽법(뉴사우스웨일스) 1997년 파트너쉽법(노던준주) 1891년 파트너쉽법(퀸즐랜드) 1891년 파트너쉽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1891년 파트너쉽법(테즈메이니아) 1958년 파트너쉽법(빅토리아)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뉴사우스웨일스, 노던준주, 퀸즐랜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테즈메이니아 및 빅토리아 주 또는 준주에 설립된 유한 파트너쉽 또는 법인화된 유한 파트너쉽은 해당 주 또는 준주에 사무소, 본점 또는 등록된 사무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분야	보안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1997년 보안산업법(뉴사우스웨일스)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뉴사우스웨일스에서 보안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면허를 취득하려는 인은 호주 시민 또는 호주 영주권자여야 한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법(노던준주)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경품권)규정(노던준주)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3자 거래제도[9]의 발기인은 호주에 사무소를 유지하여야 한다.

[9] "제3자 거래제도"란 소비자가 공급자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취득하는 것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취득과 관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할인, 양보나 이익의 형태로 제3자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조건이 되는, 제도나 약정을 말한다.

분야	전문직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1981년 변호사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외국 법무법인의 자회사인 회사는 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른 회사나 법인과 이익을 분배하도록 허용되지 아니한다. 외국법을 취급하는 외국인인 자연인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자문사로서만 현지 법무법인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현지 변호사와 파트너쉽을 체결하거나 현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다. (호주 외부 지역의 법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분야	전문직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근거	1990년 특허법(연방) 1991년 특허규정(연방)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특허변호사는, 호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등록하기 위해서는, 호주에 상시적으로 거주해야 한다[10].

[10]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호주에 집을 가지고 있거나, 호주가 그 자신의 영구적인 거주지인 경우, 일시적으로 호주에 거주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호주에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인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특별한 또는 일시적인 목적으로만 호주에 거주하는 인은 상시적으로 호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분야	전문직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1947년 수탁회사법(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1964년 수탁회사법(뉴사우스웨일스) 1981년 회사(수탁자 및 개인대리인)법(노던준주) 1968년 수탁회사법(퀸즐랜드) 1988년 수탁회사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1953년 수탁회사법(테즈메이니아) 1984년 수탁회사법(빅토리아) 1987년 수탁회사법(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노던준주 2001년 회사법(연방) 제601RAA절에 정의된 "허가된 수탁회사" 또는 노던준주의 법에 따라 검인증서를 취득하거나 그와 같이 행위하도록 승인된 법인이 아닌 한, 법인은 검인증서를 취득하거나 유언 집행자 또는 사망한 자의 재산의 수탁자로 행위할 수 없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회사는 2001년 회사법(연방) 제601RAA절에 정의된 "허가된 수탁회사" 인 경우에만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수탁회사로 행위할 수 있다.

분야	전문직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정부수준	중앙 및 지역
조치근거	2001년 회사법(연방) 1998년 주택협동조합 및 스타-보우켓 소사이어티스법(뉴사우스웨일스) 1981년 변호사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2009년 변호사규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1980년 부동산중개인법(빅토리아)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연방 호주에 상시적으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인은 회사의 감사나 청산인으로의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의 최소 1인의 파트너는 등록된 회사의 감사로서 호주에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인이어야 한다. 뉴사우스웨일스 특정된 종류의 학회 및 협회의 감사가 되고자 하는 인은 뉴사우스웨일스에 상시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의 신탁계정을 위하여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당사자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여야 한다. 빅토리아
	그 밖의 모든 오스트레일리아 주 및 준주 2001년 회사법(연방) 제5D장의 의미 내의 "허가된 수탁회사"가 아닌 한, 법인은 검인증서를 취득하거나 유언 및 유언보충서의 집행인으로 행위할 수 없다.

감사법인은 감사법인의 최소 1인이 호주 거주자가 아닌 한 재단 대리인의 계정을 감사할 수 없다.

분야	전문직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건축사법(노던준주)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건축 파트너쉽 또는 회사로 등록할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파트너쉽/회사는 노던준주 내에 사업장을 가지거나 그 안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분야	전문직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최혜국 대우(제7.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근거	1958년 출입국법(연방)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호주에서 출입국 대리인으로 개업하고자 하는 인은 호주 시민이거나 영주권자 또는 특별범주비자를 가진 뉴질랜드 시민이어야 한다.

분야	전문직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근거	1901년 관세법(연방)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호주에서 관세사로 행위하려면, 서비스공급자는 호주 내 및 호주로부터 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

분야	연구 및 개발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2004년 생물탐사법(퀸즐랜드)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성과공유계약을 위해서는, 생물탐사 연구 및 상업화를 수행하기 위한 샘플 또는 파생물의 사용을 위한 재실시권이, 최초로 퀸즐랜드 기반 실체에게 제안되고, 그 후에 호주 기반 실체, 그리고 그 후에 해외 기반 실체에 제안되어야 한다. 성과공유계약을 가지고 있는 실체는 해외 기반 실체에게 재실시권을 부여하기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분야	부동산 및 유통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현지주재(제7.5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1989년 공동체토지관리법(뉴사우스웨일스) 1996년 스트라타단지관리법(뉴사우스웨일스) 2002년 재산, 가축 및 사업중개인법(뉴사우스웨일스) 중개인 면허법(노던준주) 2003년 중개인법(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2000년 부동산중개인 및 자동차중개인법(퀸즐랜드) 1980년 부동산중개인법(빅토리아) 2006년 부동산거래중개인법(빅토리아) 1978년 부동산 및 사업중개인법(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1979년 부동산 및 사업중개인(일반)규정(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1981년 결제중개인법(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1982년 결제중개인규정(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뉴사우스웨일스 호주 거주자가 아닌 인은 (개발 지구, 근린 지구 또는 스트라타 지구의 소유주를 위한) 중개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호주 거주자가 아닌 인은 (부지 소유주를 위한, 소유주의 회사와의 거래를 위한) 중개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뉴사우스웨일스에서 재산, 가축, 사업, 스트라타 관리 또는 공동체 관리 중개인으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면허권자는 뉴사우스웨일스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노던준주 허가 받은 중개인[11]은 호주에 사무소를 가지고 그 곳에서 또는 그 곳으로부터 허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11] "허가 받은 중개인" 은 부동산중개인, 사업중개인 또는 부동산거래중개인을 포함한다.

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부동산중개인은 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에 주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퀸즐랜드

부동산중개인, 경매인, 자동차중개인 또는 상업중개인으로 영업하려는 인은 퀸즐랜드에 사업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사서함이 아닌 실체가 있는 주소여야 한다.

빅토리아

빅토리아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중개인으로 면허를 받을 수 없으며, 빅토리아에 본점을 유지해야 한다. 중개인의 대표자는 빅토리아에 문서가 송달될 수 있는 등록된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빅토리아에 주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빅토리아에서 부동산거래중개인으로 면허를 받거나 부동산거래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부동산중개인 또는 사업중개인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인은 주 내에 등록된 사무소를 설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결제중개인(부동산거래중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인은 주 내에 상시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허가받은 결제중개인은 주 내에 등록된 사무소를 설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분야 어업 및 진주채취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정부수준 중앙 및 지역

조치근거 1991년 수산업관리법(연방)
1991년 외국인어업허가부담금법(연방)
1994년 수산업관리법(뉴사우스웨일스)
1995년 수산업법(빅토리아)
1994년 수산자원관리법(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1990년 진주채취법(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2001년 8월 장관정책지침 제17호(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연방

호주어업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어선[12]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어선이 이러한 어업활동을 하도록 승인받은 경우에는 부과금이 부과[13]될 수도 있다.

뉴사우스웨일스

외국인이나 외국인 소유 기관은 지분관리어장에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빅토리아

어장접근허가나 양식허가는 호주 거주자인 자연인이나 호주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단독회사에게만 발급

[12] 이 유보사항의 목적상, "외국어선"은, 1991년 수산업관리법(연방)에 따른 호주 선박의 정의, 즉 호주국적선박(해외 거주자에 의하여 소유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호주 거주자나 회사에 의하여 소유되고 호주에서 건조되고 영업기반을 둔 선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선박이다.

[13] 부과되는 부과금은 1991년 외국인어업허가부과금법 또는 그 개정법을 따른다.

될 수 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시민 또는 영주권자인 개인만이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진주채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면허를 보유한 법인, 파트너쉽 또는 신탁의 경우, 호주인이 소유 및/또는 지배해야 한다. (발행주식자본, 파트너쉽 지분 또는 신탁재산의 최소 51퍼센트가 호주인에 의하여 소유되어야 한다. 의장, 이사회 과반수 및 모든 회사 임원이 호주인이어야 하며, 호주 지분에 의하여 지명되거나 이를 대표해야 한다.)

분야 광업 및 관련 서비스

관련의무 이행요건(제11.9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1985년 마운트 아이자 광산회사 계약법(퀸즐랜드)

유보내용 투자

마운트 아이자 광산의 운영자는 합리적으로 및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한 한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퀸즐랜드 내에 거주하고 이용가능한 전문 자문인의 서비스를 이용한다.

나. 퀸즐랜드 내에서 이용가능한 노동력을 이용한다.

다. 시방서를 작성하고, 입찰을 구하고, 업무·자재·공장·장비 및 공급품에 대한 계약을 할 때, 퀸즐랜드의 공급자·제조자 및 계약자에게 합리적인 입찰 또는 견적 기회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라. 업무·자재·공장·장비 및 공급품에 계약을 하거나 주문을 할 때, 가격·품질·납품 및 서비스가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동등하거나 더 좋은 경우, 퀸즐랜드의 공급자·제조자 및 계약자를 적절히 고려하고 가능한 경우 우선권을 준다.

분야	유통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1983년 쌀마케팅법(뉴사우스웨일스) 1946년 감자마케팅법(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뉴사우스웨일스는 쌀에 대한 마케팅 위원회 합의를 유지하며,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는 감자에 대한 마케팅 위원회 합의를 유지한다.

분야	기타 사업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매춘규제법(노던준주)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에스코트 중개업에 대한 운영자 허가나 관리자 허가를 받을 자격을 가지려면, 그 개인은 노던준주의 거주자여야 한다. 운영자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의 경우 그 직원 역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근거	1991년 텔스트라 회사법(연방)
유보내용	투자 총 외국 지분은 텔스트라 주식의 35퍼센트 이하로 제한된다. 개별 또는 조직된 단체의 외국인 투자는 주식의 5퍼센트 이하로 제한된다. 텔스트라의 의장과 이사 과반수는 호주 시민이어야 하며, 텔스트라는 호주에 본점, 주영업소, 설립장소를 유지해야 한다.

분야	유통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총기법(노던준주)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총기면허[14]를 받으려면 노던준주에 거주해야 한다. 면허와 허가는 보유자가 노던준주 영구 거주를 중단한 후 3개월 이후에 실효된다.

[14] 총기면허는 총기중개인 면허, 기립장비 담당자 면허, 총기박물관 면허, 총기 수집가 면허, 총기 직원 면허 및 페인트볼 운영자 면허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분야	유통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주류법(노던준주) 및 정책과 관행 카바관리법(노던준주) 담배관리법(노던준주) 및 정책과 관행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노던준주 면허위원회는, 면허권자가 개인일 경우 주류 면허권자가, 또는 파트너쉽이 면허를 보유한 경우 면허권자 중 최소 1인이, 또는 회사가 면허를 보유한 경우 면허 명의자가, 면허와 관련된 지역 현지에 상시적으로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담배소매면허 보유자는 면허에 명시된 지역에서만 담배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주류 면허 지역과 관련된 담배소매면허는 해당 지역의 주류 면허권자에게만 부여된다.

카바소매면허 신청인은 노던준주의 관련 면허 지역에서 상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분야	유통서비스
관련의무	이행요건(제11.9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1994년 와인산업법(퀸즐랜드)
유보내용	투자

와인 판매를 위한 와인상인면허를 취득하려면, 면허를 받은사람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퀸즐랜드 와인산업에 기여해야 한다. 와인 판매를 위한 와인생산자면허를 취득하려면, 면허와 관련된 지역에서 그 인이 직접 기른 과실로부터 만든 와인을 판매하거나, 면허와 관련된 지역에서 그 인이 직접 만든 와인을 판매해야 한다.

분야	보건의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근거	1961년 국립혈청연구소법(연방)
유보내용	투자

중대한 외국인 주식보유[15]에 따른 의결권은 특정 시기에 재임한 국립혈청연구소(CSL)의 이사 중 1/3을 초과하는 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에 관하여는 산입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점, 국립혈청연구소가 사용하는 주설비 및 호주에서 개인이 기부한 혈액 또는 혈장에서 추출한 사람의 혈장에서 파생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국립혈청연구소의 자회사는, 호주에 위치해야 한다. 국립혈청연구소 이사회 이사의 2/3와 모든 회의의 의장은 호주 시민이어야 한다. 국립혈청연구소는 호주 밖에서 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한다.

[15]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중대한 외국인 주식보유" 란 외국인이 국립혈청연구소에서 의결권있는 주식의 최소 5퍼센트에 대한 해당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외국인이 해당 권리를 가지고 있는 국립혈청연구소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분야	관광 및 여행관련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1988년 여행사법(퀸즐랜드) 1985년 여행사법(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1986년 여행사규정(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퀸즐랜드

여행사로 영업하기 위한 허가를 취득하려는 인은 퀸즐랜드에 사업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여행사로 사업을 수행하려는 인은 주 내에 주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분야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1992년 자연보전법(퀸즐랜드) 2006년 자연보전(야생동물 관리)규정(퀸즐랜드) 2006년 자연보전(행정)규정(퀸즐랜드) 2000년 자연보전(보호식물)보전계획(퀸즐랜드)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퀸즐랜드 환경유산보호부의 책임자는 야생동물 이동허가를 제외한 야생동물 권한을 주 내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게만 부여할 수 있다[16].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인만 보호 식물을 위한 승인된 재배자 또는 번식자로 승인할 수 있다.

가. 자연인인 경우, 주의 거주자일 때, 또는

나. 회사인 경우, 회사가 식물을 재배하거나 번식시키는 부지를 주 내에 가지고 있을 때

개인이나 회사는, 개인인 경우 호주 시민이거나 호주에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또는 법인인 경우 호주에서 설립된 경우에만, 이 법에 따른 결정, 결정 미비 또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로 취급된다.

[16] 이 용어는 2006년 자연보전(행정)규정(퀸즐랜드) 목록7에 정의되어 있다.

분야	운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현지주재(제7.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근거	2010년 경쟁 및 소비자법(연방)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호주로 또는 호주에서부터 국제 정기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원양화물선은 항상 호주 거주자인 자연인에 의하여 대표되어야 한다.

등록된 해운규약가맹동맹 또는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진 등록된 비동맹 원양화물선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인[17]만이, 합리적인 한도에서, 동맹 회원 및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진 비동맹 사업자가 다른 해상운송사업자가 외부로 향하는 정기화물 서비스의 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합리적' 임을 결정하는데 해당되는 사안에는 호주의 국익과 호주 운송업체의 이익이 포함된다.

[17]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2010년 경쟁 및 소비자법 제10부의 제10.48절 및 제10.58절은 이 유보사항이 적용되는 인들의 범주를 열거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근거	1920년 항공법(연방) 장관성명
유보내용	투자

개별적인 호주국제항공사(콴타스 제외)의 외국인 소유권의 합은 최대 49퍼센트로 제한된다.

더 나아가, 다음 사항이 요구된다.

가. 이사회의 최소 2/3는 호주시민이어야 한다.
나. 이사회 의장은 호주 시민이어야 한다.
다. 항공사의 본점은 호주에 위치해야 한다. 그리고
라. 항공사의 운영기반은 호주에 위치해야 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근거	1992년 콴타스매각법(연방)
유보내용	투자

콴타스 항공의 외국인 소유권의 합은 최대 49퍼센트로 제한되며, 개별적인 외국인의 지분 소유는 25퍼센트, 그리고 외국항공사 지분의 합은 35퍼센트로 제한된다. 또한

가. 콴타스의 본점은 항상 호주에 위치해야 한다.
나. 콴타스 운영시설의 과반은 호주에 위치해야 한다.
다. 항상, 콴타스 이사의 최소 2/3는 호주 시민이어야 한다.
라. 콴타스 이사회 회의에서 회의 의장인 이사(어떻게 기술되든)는 호주 시민이어야 한다. 그리고
마. 콴타스는 호주 외부에서 법인이 되기 위한 행위를 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분야	운송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내국민 대우(제7.2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상업승객(도로운송)법(노던준주) 2002년 도로운송(공공승객서비스)규정(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노던준주 택시면허는, 보유자가 개인인 경우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노던준주에 상시적으로 거주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인인 경우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주사업장이 노던준주에 있지 아니한 경우, 취소된다. 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공공 운송 서비스 운영 인증 신청은 호주 시민이나 호주 영주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부속서 II
주해

1. 이 부속서의 당사국의 유보목록은 제7.6조(비합치 조치 –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제11.12조(비합치 조치 – 투자)에 따라, 그 당사국이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가. 제7.2조(내국민 대우 – 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1.3조(내국민 대우 – 투자)

   나. 제7.3조(최혜국 대우 – 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1.4조(최혜국 대우 – 투자)

   다. 제7.4조(시장접근 – 국경 간 서비스무역)

   라. 제7.5조(현지주재 – 국경 간 서비스무역)

   마. 제11.9조(이행요건 – 투자), 또는

   바. 제11.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 투자)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7.6조제2항 및 제11.12조제2항에 따라 유보항목에 열거된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들)을 명시한다.

   다.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라. **기존의 조치**는, 투명성의 목적상,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적시한다.

3. 제7.6조제2항 및 제11.12조제2항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하위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한국의 경우, "외국인"이란 외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이행요건(제11.9조)
유보내용	투자

1. 한국은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2012) 제4조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2012) 제5조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한을 유보한다. 다만 한국은 즉시 호주에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였다는 서면통지를 하고, 그러한 조치는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201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2012) 및 그 밖의 적용 가능한 법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나. 그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채택되거나 유지된다.

   다.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례한다.

2. 제11.16조제1항에 따른 중재에 제기될 수 있는 청구를 저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다음의 청구를 제11장(투자)의 제2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가. 한국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조치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제19장(투명성)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제8.9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유보항목은 제8.2조(내국민 대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합치 조치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은 과거 민간기업이었으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결과로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공기업에는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도 포함된다.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의 부속서I 및 부속서II 상 약속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한국은 정부권한의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한국 법이 허용하는 특급배달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인 한도에서 제7.2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1.3조(내국민 대우)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문단은 한국이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기존의 조치	나. 청구인 또는 해당되는 경우 청구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한국 기업이 그 조치를 이유로 또는 그 조치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한 청구의 경우, 제11장 제2절이 준용되며, 제11장 제1절상의 의무 위반 또는 위반주장에 대한 제11장 제2절상의 모든 언급은 이 유보항목이 없었다면 제11장 제1절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될 그 조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한국이 그 조치가 제1항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열거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중재판정부가 만족하도록 입증한 경우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없다. 3. 제1항에 언급된 조치가 제8장(금융서비스)의 적용대상인 한도에서 이 유보항목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법률 제11535호, 2012.12.1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제8.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유보항목은 제8.2조(내국민 대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합치 조치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기존의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법률 제11845호, 2013.5.28)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자연인의 주재에 의한, 또는 제10장(자연인의 이동)의 규정에 따른 이민, 입국 또는 일시체류를 포함한 자연인의 그 밖의 이동에 의한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방위산업체(방위사업법 제3조에 규정된 기업)의 신주발행 주식이 아닌 기발행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에 규정)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얻는다.
기존의 조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법률 제11535호, 2012.12.11) 방위사업법 제35조(법률 제11713호, 2013.3.23)

분야	토지취득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의 토지 취득은 계속 허용된다. 가. 외국인토지법 제2조상의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나. 아래의 정당한 사업목적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상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나 외국법인의 지점인 경우. 다만,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2) 고위경영진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그리고 3) 해당 법에 규정된 토지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한국은 외국인에 의한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외국인토지법 제2조부터 제6조까지(법률 제11690호, 2013.3.23) 농지법 제6조(법률 제11694호, 2013.3.23)

분야	총포 · 도검 · 화약류 및 유사 물품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사용, 판매, 보관, 운반, 수입, 수출 그리고 소지를 포함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및 석궁 분야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취약집단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집단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국가소유의 국가전자/정보시스템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현지주재(제7.5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정부 고유의 비밀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기능 및 권한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소유의 전자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금융서비스 관련 지급 및 결제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시장 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인 한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복지, 공공 훈련, 공익사업, 대중교통, 공공주택, 보건 및 보육.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4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 SC/48/ Suppl.1/ 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및 GATS/SC/48/Suppl.3/Rev.1)에 기술된 대로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으로만,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다음의 변경을 조건으로 한다.

가. "모든 분야"로 기술된 유보항목을 제외하고, 한국 부속서 I의 유보항목 중 관련 의무란에 시장접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서비스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이라고 기재하고, 서비스공급형태 4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는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고 기재한다.

나. "모든 분야"로 기술된 유보항목을 제외하고, 한국 부속서 I상의 유보항목 중 시장접근 의무에 대한 제한사항을 기술한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항을 해당 서비스공급 형태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기재한다. 그리고

다. 부록 II-가에 기재된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부록 II-가에 적시된 바와 같이 수정된다.

이러한 변경은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GATS 제16조제2항바호 관련 어떠한 제한 사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제7.6조(비합치 조치)에 의하여 수정된 대로의 제7.5조(현지주재)가 적용된다는 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항공 나. 수산, 또는 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편방향위성전송(DTH) 및 직접방송위성(DBS) 텔레비전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오디오 서비스와 관련, 상호주의 조치의 적용을 이유로 또는 라디오 스펙트럼의 공유, 시장접근 보장 또는 내국민 대우와 관련한 국제협정을 통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환경서비스 – 음용수 처리 · 공급서비스, 생활폐수 수집 · 처리서비스,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 처리서비스, 위생 및 유사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이행요건(제11.9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다음의 환경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 그리고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환경영향평가서비스는 제외한다) 이 유보항목은 관련 법 및 규정에서 상기 서비스에 대하여 사적 공급이 허용되는 한도에서 민간 당사자간 계약에 따른 해당 서비스의 공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 철도운송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철도운송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원자력 에너지 – 원자력발전: 핵연료의 제조 및 공급, 핵물질,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사용 및 조사된 핵연료 처리 및 처분을 포함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 모니터링 서비스, 핵에너지 관련 서비스, 설계·유지 및 보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원자력에너지 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에너지 서비스 –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배전 및 전력 판매, 그리고 전력사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 (제7.2조 및 제11.3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의 에너지산업(원자력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배전 및 전력판매)과 관련된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전력산업에서의 외국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제11.9조제1항 바호와 불합치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분야	에너지 서비스 – 가스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천연가스의 수입과 도매 유통, 그리고 인수기지와 전국 고압 주배관망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의 에너지산업(가스산업)과 관련된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가스산업에서의 외국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분야	유통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중개서비스, 도매 및 소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이행요건(제11.9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농축산물, 식음료에 대한 중개서비스 나. 곡물, 육류, 가금, 곡분, 홍삼, 비료에 대한 도매서비스, 그리고 다. 쌀, 인삼 및 홍삼에 대한 소매서비스

분야	운송 서비스 – 도로여객운송 서비스(택시 서비스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택시 서비스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운송 서비스 – 도로화물운송 서비스(쿠리어 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 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국제해운회사에 의한 컨테이너화물 도로운송(카보타지는 제외한다)과 쿠리어 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 서비스를 제외하고, 한국은 도로화물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운송 서비스 – 내륙주운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내륙주운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운송 서비스 – 저장 및 창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과 관련된 저장 및 창고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비독점 우편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군복무자 또는 이와 동등한 신분을 지닌 인이 우체국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그 부처에 속하는 차량 정수의 결정과 우체국에 그 차량을 배정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한국 우정당국은 국내 및 국외 서신의 수집, 처리, 배송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 우정당국의 배타적 권리는 우편망에 대한 접근과 그 운영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기존의 조치	우편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병역법 (법률 제11849호, 2013.6.4)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방송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이 유보항목이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서비스 유보항목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보장한다.
기존의 조치	방송법 제8조, 제9조,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제78조 및 제78조의2 (법률 제12093호, 2013.8.13) 방송법 시행령 제14조, 제50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및 제61조의3(대통령령 제24763호, 2013.9.26)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통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란 해당 서비스 공급자가 소유 또는 통제(임차를 포함한다)하는 전용 전송 용량을 통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말하며, IPTV와 양방향 방송을 포함한다.
기존의 조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제7조, 제9조, 제18조 및 제21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20조(대통령령 제24445호, 2013.3.23)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이행요건(제11.9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영화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특혜를 주는 어떠한 공동제작 약정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공동제작 약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물에 부여될 수 있는 공식 공동제작물 지위는 공동제작 약정의 대상이 되는 작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기존의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02호, 2013.7.16)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135호, 2008.12.31)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이행요건(제11.9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방송 또는 시청각 프로그램이 한국 콘텐츠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이 유보항목이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서비스 유보항목 또는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 및 통신서비스 유보항목과 불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기존의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0조(법률 제11902호, 2013.7.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9조 (대통령령 제24036호, 2012.8.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8호 2012.8.17)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135호, 2008.12.31)

분야	사업 서비스 – 부동산 서비스(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이행요건(제11.9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외한 부동산 개발·공급·관리·판매 및 임대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서비스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기업구조조정조합, 그리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를 포함한 기업구조조정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제8장(금융서비스)에서의 권리와 의무에 따른 현행의 합법적 투자은행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분야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이행요건(제11.9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의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 또는 그 장르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지 아니하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할 때, 한국은 한국 소비자들이 그러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거부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 소비자를 겨냥한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와 관련하여, 한국은 그러한 콘텐츠의 이용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위 문단에 의거하여 채택되는 어떠한 조치도 제19장(투명성)의 규정과, 적용 가능한 경우 제7.8조(규정의 개발 및 적용에서의 투명성)에 따라 시행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하며, 필요 이상으로 교역 제한적이거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송유형에 상관없이 스트리밍 오디오 콘텐츠, 영화 또는 그 밖에 비디오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이 협정 서명일 현재 방송법에 정의된 방송 서비스나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 및 통신서비스 유보항목에서 정의된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존의 조치	콘텐츠산업 진흥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분야	사업서비스 – 지적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지적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사업 및 환경 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 농업 · 수렵 · 임업 및 어업 부수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유전적 개량, 인공수정, 벼 및 보리 도정,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과 관련된 제반 활동 등을 포함한 농업, 임업 및 축산업 부수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농협 · 산림조합 및 수협에 의한 농업 · 수렵 · 임업 및 어업 부수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어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한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행위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신문 발행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신문의 발행(인쇄 및 배포를 포함한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2013.3.2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분야	교육서비스 – 유아 · 초등 · 중등 · 고등 및 기타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유아 · 초등 및 중등교육, 의료 · 보건관련 고등교육, 유아 · 초등 및 중등교원양성 고등교육, 법학전문대학원, 모든 교육 수준의 원격교육(학점, 졸업장 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성인 교육 서비스는 제외한다), 그리고 기타교육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사회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시장 접근(제7.4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시행령, 시행규칙 및 그 밖의 부속 규정을 포함해 다음에 기재된 법령 또는 대체 법령은 투명성 사례의 일부이다. 이 유보내용에는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안이 포함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약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결핵예방법 암관리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한의약 육성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의료기기법 축산물위생 관리법 화장품법 국민체육진흥법

분야	보건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시장 접근(제7.4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다음과 관련한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혈액 및 그 구성성분의 수집, 혈장분획제제를 포함한 혈액 및 혈액 제제의 유통, 혈장분획 서비스, 그리고 혈액과 혈액제제 및 서비스의 조달
기존의 조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혈액관리법 약사법

분야	레크리에이션 · 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 영화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이행요건(제11.9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영화의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02호, 2013.7.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036호, 2012.8.13)

분야	레크리에이션 · 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 박물관 및 기타 문화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문화재의 발굴, 감정 또는 매매를 포함한 문화재의 보존, 재건 및 복원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1228호, 2012.1.2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62호, 2012.6.1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82호, 2011.7.2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78호, 2011.2.16)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30호, 2012.12.11)

분야	기타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농어촌지역 관광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법률 서비스 – 외국법자문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한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1]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변호사와 동등한 자격을 외국에서 취득한 자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어떠한 유형으로라도 한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자격 부여·승인·등록·허용 및 감독 그리고 그 밖의 요건에 대한 제한[2];

나. 변호사와 동등한 자격을 외국에서 취득한 자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변호사·법무회사(로펌)·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와 동업·상사연합·제휴 또는 법적 유형을 막론하고 그 밖의 어떠한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대한 제한[3];

다. 변호사와 동등한 자격을 외국에서 취득한 자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내에서 한국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를 고용하는데 대한 제한,[4] 그리고

라. 외국법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호주 법무회사(로펌)가 한국에 대표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호주에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관하여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한국 법무회사(로펌)와 특정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 이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호주 법무회사(로펌)가 한국법무회사(로펌)와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국은 그 합작투자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 비율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합작투자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한국 변호사를 파트너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다.

3. 한국은 최소한 제2항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호주 법무회사(로펌)"란 호주법에 따라 설립되고 본점 사무소가 호주 내에 있는 법무회사(로펌)를 말한다.

---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시입국을 위해서는 상업적 주재가 요구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여기에는 한국에서 그러한 유형의 법률 서비스를 한국에서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여기에는 한국에서의 그러한 관계 형성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여기에는 한국에서의 그러한 고용관계의 창설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분야 전문직 서비스 – 외국공인회계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한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한국 공인회계사를 고용하는 데 대한 제한

   나. 외국 공인회계사가 한국 내에서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제한, 그리고

   다. 공인회계 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다음을 허용한다.

      1) 호주 내에 등록한 호주 공인회계사 또는 호주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 한국에 설립한 사무소를 통하여 호주 또는 국제 회계법 및 기준에 대한 회계컨설팅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2) 호주에 등록된 호주 공인회계사가 한국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것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한국은 호주 내에 등록한 호주 공인회계사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한국 회계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한국 공인회계사가 한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한다. 그리고

      2) 호주에 등록된 호주 공인회계사 1인은 한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10퍼센트 미만까지 보유한다.

3. 한국은 최소한 제2항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 "호주에 등록된 호주 공인회계사" 란 공인회계사(Certified Practising Accountant) 또는 칙허회계사(Chartered Accountant)의 자격을 갖춘 호주 회계사를 말한다. 그리고,

   나. "호주 회계법인"이란 호주법에 따라 조직되고 그 본점사무소가 호주에 있는 회계법인 또는 파트너십을 말한다.

분야	전문직 서비스 – 외국세무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현지주재(제7.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한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한국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고용하는 데 대한 제한 나. 외국 세무사가 한국 내에서 세무조정 및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제한, 그리고 다. 인증된 세무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다음을 허용한다. 1) 호주 내에 등록된 호주 세무사 또는 호주 법에 따라 설립된 호주 세무법인이 호주 또는 국제 세법 및 세제에 대한 세무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 그리고 2) 호주 내에 등록된 호주 세무사가 한국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는 것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한국은 호주 내에 등록된 호주 세무사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한국 세무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한국 세무사가 한국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한다. 그리고 2) 호주에 등록된 호주 세무사 1인은 한국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10퍼센트 미만까지 보유한다. 3. 한국은 최소한 제2항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 "호주에 등록된 호주 세무사" 란 공인회계사(Certified Practising Accountant) 또는 칙허회계사(Chartered Accountant)의 자격을 지닌 호주 세무사를 말한다. 그리고 나. "호주 세무법인" 이란 호주법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호주에 있는 세무법인 또는 파트너십을 말한다.
기존의 조치	세무사법 제6조, 제13조, 제16조의3 및 제20조(법률 제11610호, 2013.1.1)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대통령령 제24824호, 2013.11.5)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지침 제20조 및 제22조(국세청 훈령 제1761호, 2009.8.24)

분야	사업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통제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인만이 그러한 물품,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의 수출 또는 재수출을 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의 조치	원자력 진흥법(법률 제11714호, 2013.3.23) 대외무역법(법률 제11873호, 2013.6.7)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9호, 2013.5.31) 관세법(법률 제11602호, 2013.1.1)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제7.1조제5항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예를 들어 법집행 및 교정서비스와 같이 정부권한의 행사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에 관하여 한국과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 투자, 또는 나. 제8장(금융서비스)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한국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

분야	운송서비스 – 해상여객운송과 연안해상운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아래 조치를 포함하여 국제해상여객운송 서비스의 제공, 연안해상운송 및 한국 선박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국제해상여객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획득하여야 한다.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한다.

관련 국내법에 따라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연안해상운송은 한국 선박을 위하여 유보되며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 간의 여객 또는 화물 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된다.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규정된 대륙붕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된다. "한국선박"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 정부, 공기업 또는 해양수산부의 산하기관이 소유한 선박

나. 한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다. 한국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선박, 또는

라. 한국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가 한국 국민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선박.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가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항 항만활동에 관한 조치는 제22.2조(필수적 안보)의 적용을 조건으로 한다.

부록 II-가

다음 분야의 경우, GATS 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 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연구 및 개발 서비스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 및 개발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 대한 연구 및 개발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학제간 연구 및 개발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시장조사 및 대중여론 조사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광업 부수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다음 분야의 경우, GATS 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 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포장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컨벤션 대행 서비스 이외의 컨벤션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관광 및 여행관련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제공 서비스	
철도 및 항공운송 관련 시설의 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 제공 서비스 제외	
여행 대행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관광객 안내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오직 여행사만이 관광객 안내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된다"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부속서 II
호주의 유보목록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시장접근(제7.4조)
이행요건(제11.9조)
현지주재(제7.5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호주는 자연인의 주재, 또는 제10장(자연인의 이동) 규정에 따른 이민, 입국 혹은 일시 체류를 포함하는 그 밖의 자연인의 이동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시장접근(제7.4조)
이행요건(제11.9조)
현지주재(제7.5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호주는 서비스 분야에서의 상업적 혹은 산업적 사업의 매입, 설립, 혹은 운영과 관련하여 원주민 혹은 원주민 단체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원주민 혹은 원주민 단체의 우대를 규정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호주는 투자와 관련하여 원주민 또는 원주민 단체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원주민 또는 원주민 단체의 우대를 규정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내용의 목적상, 원주민이란 호주 원주민 종족의 사람 혹은 토러스 해협 제도 원주민의 후손을 말한다.

기존의 조치 다음을 포함하는 모든 정부 수준의 법령 및 장관성명

호주의 외국인 투자 정책
1993년 원주민권리법(연방)
1976년 원주민 토지권리(노던준주)법(연방)
1983년 원주민 토지권리법(뉴사우스웨일즈)
1994년 원주민권리(뉴사우스웨일즈)법(뉴사우스웨일즈)
1991년 원주민 토지법(퀸즐랜드)
1991년 토리스해협제도 토지법(퀸즐랜드)
1994년 원주민권리(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1984년 마랄링가 차루차 토지권리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1981년 아난구 피찬차차라 얀쿠니차차라토지권리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2010년 아난구 피찬차차라 얀쿠니차차라 토지권리규정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2003년 피찬차차라 토지권리규정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아난구 피찬차차라 얀쿠니차차라 토지 및 마랄링가 차루차 토지를 운영하는 법정 기구
1971년 광업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1995년 오팔광업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1995년 원주민 토지법(태즈매니아)
2010년 원주인정착법(빅토리아)

분야 취약집단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투자

호주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소수 집단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 집단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4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호주는 세계무역기구 도하 개발 어젠다 협상에서 나온 2005년 5월 31일자 호주 개정서비스 제안(WTO 문서 – TN/S/O/AUS/Rev.1)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지역정부 수준의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이행요건(제11.9조)
유보내용	투자 호주는 개발된 비거주 상업부동산을 제외한 호주의 도심지역[1]에 투자한다는 외국인[2]과 외국정부투자자의 제안(임대, 융자 및 이익공유 약정, 그리고 도심지역 기업 및 신탁의 지분 취득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호주의 외국인 투자 정책. 여기에는 1975년 외국인 취득 및 인수법(연방), 1989년 외국인 취득 및 인수규정(연방), 1998년 금융분야(주식보유)법(연방) 및 장관성명이 포함된다. 2012년 경제개발법(퀸즐랜드) 2009년 지속가능한 계획법(퀸즐랜드) 1997년 리조트개발 통합법(퀸즐랜드) 1992년 복합개발법(퀸즐랜드) 1995년 셍추어리 코브 리조트법 (퀸즐랜드) 1993년 타운스빌 시의회(더글라스 토지 개발)법 (퀸즐랜드)

[1] "호주 도심지역" 이란 용어는 1975년 외국인 취득 및 인수법에 기재된 의미를 갖는다.

[2] "외국인" 이란 용어는 1975년 외국인 취득 및 인수법에 기재된 의미를 갖는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투자
	호주는 호주에 투자한다는 외국인[3]과 외국정부 투자자의 제안에 대하여 그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관단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호주의 외국인 투자 정책, 여기에는1975년 외국인 취득 및 인수법(연방), 1989년 외국인 취득 및 인수규정(연방), 1998년 금융분야(주식보유)법(연방) 및 장관성명이 포함된다.

[3] "외국인" 이란 용어는 1975년 외국인 취득 및 인수법에 기재된 의미를 갖는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투자
	호주는 외국인[4]이 호주달러 1천 5백만 달러 이상을 호주 농경지에 투자하고 호주달러 5천 3백만 달러 이상을 호주 기업식 영농에 투자한다는 제안에 대하여 심사를 허용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호주의 외국인 투자 정책, 여기에는 1975년 외국인 취득 및 인수법(FATA), 1989년 외국인 취득 및 인수규정(연방), 1998년 금융분야(주식보유)법(연방) 및 장관성명이 포함된다.

[4] "외국인" 이란 용어는 1975년 외국인 취득 및 인수법에 기재된 의미를 갖는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시장접근(제7.4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호주는 다음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이 협정의 발효 시 정부권한의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민간 분야로 이양, 그리고

나. 국가 소유 단체 또는 자산의 민영화

기존의 조치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호주는 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인 한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소득 보장 또는 보험

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다. 사회 복지

라. 공공 교육

마. 공공 훈련

바. 공익사업

사. 대중교통

아. 공공주택

자. 보건 그리고

차. 보육

기존의 조치

분야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5] 광고 서비스 라이브 공연[6]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최혜국 대우[7](제7.3조 및 제11.4조)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8] 이행요건(제11.9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호주는 다음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공중파 상업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에 대한 지역 콘텐츠 전송 쿼터 나. 유료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에 대하여 호주 제작물에 적용되는 비차별적 지출 요건 다. 공중파 라디오 방송 서비스에 대한 지역 콘텐츠 전송 쿼터 라. 호주의 시청각 콘텐츠를 호주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그 밖의 시청각 서비스[9] 마. 방송서비스의 스펙트럼 운영 및 허가[10], 그리고 바. 호주 문화 활동 투자에 대한 보조금 또는 지원금
	이 유보항목은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사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존의 조치	1992년 방송서비스법(연방) 1992년 무선통신법(연방) 1936년 소득세 과세법(연방) 1997년 소득세 과세법(연방) 2008년 호주영화법(연방) 2005년 방송서비스(호주 콘텐츠) 표준 2009년 아동용 텔레비전 표준 텔레비전 프로그램 표준 23 – 광고의 호주 콘텐츠 상업라디오 실무규범 및 지침 지역방송 실무규범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호주는 오스트레일리아방송공사와 특수방송서비스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가호부터 바호까지에 따른 조치들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6] 바호에만 적용된다.

[7] 뉴질랜드 프로그램이나 제작물의 지역콘텐츠 대우에만 적용된다.

[8] 라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 허가와 마호에만 적용된다.

[9] 그러한 조치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호주의 약속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이행될 것이다.

[10] 마호에 대하여, 호주의 유보는 시장접근과 현지주재 의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분야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이행요건(제11.9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호주는 국제공동제작프로그램에 따라 시청각 제작물을 위한 공동제작특혜약정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러한 공동제작 약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물에 부여될 수 있는 공식 공동제작물 지위는 그러한 약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작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기존의 조치	국제공동제작프로그램

분야	레크리에이션·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11]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최혜국 대우(제 7.3조 및 제11.4조)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호주는 창조적 예술품,[12] 문화재[13] 및 도서관·아카이브·박물관 및 기타 문화 서비스를 포함하는 그 밖의 문화산업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는 시청각 서비스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2] "창조적 예술품"은 공연예술 및 기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실황 연극, 무용 및 음악을 포함함), 시각 예술 및 공예, 문학, 토착전통관습 및 현대적 문화표현물, 그리고 개별 예술형식 분류의 초월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혼성예술 작업을 포함한다.

[13] "문화재"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아카이브 및 그 밖의 문화유산수집기관이 문서화하고 보존하고 전시하는 수집품을 포함하는 민족학적, 고고학적, 역사적,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기술적 동산문화재 혹은 부동산문화재를 포함한다.

분야	교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호주는 초등교육 및 공교육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분야	교육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내국민 대우(제11.3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호주는 상업적 주재를 통한 교육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분야	유통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4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호주는 담배, 주류 또는 총포의 도소매업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분야	도박 및 베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호주는 도박 및 베팅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다음을 포함하는 법령 및 장관성명 : 2001년 인터렉티브 도박법(연방) 1999년 도박 및 경주 규제법(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2009년 불법 도박법(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2001년 경주 및 스포츠 경주권법 (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1964년 베팅(액트탭 리미티드) 법 (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1999년 경주법 (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2006년 카지노 규제법 (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2004년 도박기계법(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1998년 인터렉티브 도박법(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1964년 복권법(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1964년 풀베팅법(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1992년 카지노 규제법(뉴사우스웨일즈) 2001년 도박기계법(뉴사우스웨일즈) 1996년 공공복권법(뉴사우스웨일즈) 1901년 복권 및 추첨법(뉴사우스웨일즈) 1998년 경주관리법 (뉴사우스웨일즈) 2009년 그레이하운드 경주법(뉴사우스웨일즈) 2009년 마구경주법 (뉴사우스웨일즈) 1996년 순종경주법(뉴사우스웨일즈) 1987년 토털라이제이터법(뉴사우스웨일즈) 1998년 불법도박법(뉴사우스웨일즈) 도박규제법(노던준주) 도박기계법(노던준주) 경주 및 베팅법(노던준주) 토털라이저 허가 및 규제법(노던준주)

축구 미식축구 당구법 (노던준주)
1999년 탭 퀸즐랜드 리미티드 민영화법(퀸즐랜드)
1982년 카지노 규제법(퀸즐랜드)
1983년 주피터스 카지노 계약법(퀸즐랜드)
1992년 브리즈번 카지노 계약법(퀸즐랜드)
1984년 브레이크워터 아일랜드 카지노 계약법(퀸즐랜드)
1997년 복권법(퀸즐랜드)
1993년 케언즈 카지노 계약법(퀸즐랜드)
1999년 자선·비영리 게임법(퀸즐랜드)
1996년 키노법(퀸즐랜드)
1998년 웨이저법(퀸즐랜드)
1991년 게임기계법(퀸즐랜드)
2002년 경주법(퀸즐랜드)
1997년 카지노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1936년 복권 및 도박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1995년 독립도박당국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1992년 도박기계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1966년 주복권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2000년 경주(독점사업허가)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2000년 허가에 의한 베팅운영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2000년 탭(처분)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1993년 도박규제법(태즈매니아)
1993년 티티라인 도박법(태즈메니아)
2003년 도박규제법(빅토리아)
1958년 경주법(빅토리아)
1991년 카지노 규제법(빅토리아)
1993년 카지노 관리법(빅토리아)
1985년 카지노(버스우드 아일랜드) 계약법(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2003년 경주 및 웨이저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법(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1987년 도박 및 웨이저 위원회법(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1954년 베팅규제법(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1984년 카지노규제법(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1990년 복권위원회법(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분야 사회서비스 – 보건의료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투자

호주는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제약, 질병 및 병원 혜택, 의료 및 치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호주 헌법(제51조 제23 A 호)에 따라 입법화된 조치들을 포함하는 아래 명시된 법령 또는 대체 법령

1991년 호주 청각서비스 기관법(연방), 제8항4호부터 제8항8호까지 포함
1987년 호주 의료복지기관법(연방)
2010년 호주 예방보건국가기관법(연방)
2008년 호주 장기 · 조직 기증 및 이식 당국법(연방)
1998년 호주 방사능 보호 및 핵안전법(연방)
1998년 호주 방사능보호 및 핵안전(허가료)법(연방)
2006년 호주 스포츠 도핑방지 당국법(연방)
2006년 호주 스포츠 도핑방지 당국(결과적·과도적 조항)법(연방)
1989년 호주 스포츠 위원회법(연방)
2006년 호주암협회법(연방)
1961년 연방국립혈청연구소법(연방)
2008년 치과혜택법(연방)
1981년 전염병 연구(기밀유지) 법(연방)
1991년 식품기준 호주 뉴질랜드법(연방)
2000년 유전자기술법(연방)
2000년 유전자기술(허가료)법(연방)
1995년 보건 및 기타 서비스(보상) 법(연방)
1995년 보건 및 기타 서비스(보상) 수가법(연방)
1973년 의료보험법(연방)
2012년 의료보험개정(메디케어 안전망 확대)법(연방)
2012 의료보험개정(전문 서비스 점검)법(연방)
2000년 의료보험(허가 병리검체은행) 세금법(연방)
1997년 의료보험위원회(역할의 개혁 및 분리) 법(연방)
1991년 의료보험(병리)(수수료) 법(연방)

2009년 호주보건인력협회법(연방)
2010년 보건식별자법(연방)
1997년 청각서비스기관 운영법(연방)
1997년 청각서비스기관 및 AGHS 개혁법(연방)
1989년 공업용화학물(공시 및 평가)법(연방)
1997년 공업용화학물 (등록료－관세)법(연방)
1997년 공업용화학물(등록료－소비세)법(연방)
1997년 공업용화학물(등록료－일반)법
2002년 의료실손보장법(연방)
2005년 의료실손보장(경쟁우위납세)법(연방)
2003년 의료실손보장(신중한 감독 및 제품 수준)법, 3장 2A절(연방)
2004년 의료실손보장(잔존책임 보장 지원금)법(연방)
2002년 의료실손보장(UMP 지원금)법(연방)
2002년 의료실손보장합의(재정지원－강행 연방 의무)(연방)
2010년 전문조산사 의료실손보장(연방지원)계획법(연방)
2010년 전문조산사 의료실손보장(잔존책임 보장 지원금)법(연방)
1967년 마약류법(연방),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9조 및 제23조와 제24항1호와 그러한 조항 상의 권한과 역할에 관련된 동법의 그 밖의 조항(제12조, 제22조 및 제24항2호 제외)
2003년 국가혈액당국법(연방)
1953년 국가보건법(연방)
2012년 국가보건 개정(약물혜택계획)법(연방)
1992년 국가보건 및 의료연구위원회 법(연방)
2011년 국가보건개혁법(연방)
2007년 국가보건보장법(연방)
2012년 개인관리전자의료기록법(연방)
2007년 민간의료보험법(연방)
2003년 민간의료보험(파산보험사 부담금)법(연방)
1995년 민간의료보험(이의부담금)법(연방)
2003년 민간의료보험(위원회행정부담금)법(연방)
2009년 민간의료보험(국가인공관절등록부담금)법(연방)
2007년 민간의료보험(인공기관 사용 및 등록수수료)법(연방)
2003년 민간의료보험(위험균등화부담금)법(연방)
2007년 민간의료보험(과도조항 및 결과적개정)법(연방)
2002년 생식 목적의 인간복제 금지법(연방)
2002년 인간 배아 관련 연구법(연방)
1908년 검역법(연방), 인체 검역 관련
1985년 검역(수수료 검증)법(연방), 인체 검역 관련
2011년 담배포장간소화법(연방)
1989년 의약품법(연방)
1989년 의약품(부담금)법(연방)
1992년 담배광고금지법(연방)
1947년 세계보건기구법(연방)
1973년 복지사업(메디케어)법(연방)
2006년 영국핵실험의 호주참가자(치료)법(연방)
1986년 퇴역군인 권리법(연방)
2004년 군인 원호 및 보상법(연방)

분야 보건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호주는 다음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혈액 및 그 성분의 수집, 혈장분획제제를 포함한 혈액 및 혈액 제제의 유통, 혈장 분획 서비스, 그리고 혈액 및 혈액제제와 서비스의 조달

기존의 조치 혈액자급에 관한 호주의 정책, 여기에는 2003년 국가혈액협약, 1961년 연방혈청연구소법(연방) 및 2003년 국가혈액당국법(연방)이 포함된다.

분야	해상운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시장 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호주는 연안해상운송서비스 및 근해운송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14]
기존의 조치	1901년 관세법(연방) 1996년 작업장 관계법(연방) 1992년 선원 보상 및 원호법 (연방) 1993년 산업보건 및 안전(해운산업)법(연방) 1981년 선박등록법(연방) 1936년 소득세평가법(연방) 2012년 연안무역(호주해운활성화)법(연방) 2012년 연안무역(호주해운활성화)(부대적 수정안 및 과도 규정)법(연방) 2012년 해운개혁(조세지원)법(연방)

[14] 이 유보의 목적상, "연안운송"이란 호주에 위치한 항구와 호주에 위치한 다른 항구 간의 여객 또는 화물 운송 및 호주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내에서 시작되고 종료되는 운항으로 정의한다. "근해운송"이란 호주에 위치한 항구와 호주 대륙붕, 호주 연안의 해저 및 그러한 해저의 하부 토양 자원을 탐사하거나 이용하는 것과 연관되거나 그에 부수되는 장소 간에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과 관련된 운송 서비스를 의미한다.

분야	해상운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유보내용	투자 호주는 호주 내 선박 등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분야	운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투자 호주는 연방임대공항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996년 공항법(연방) 1996년 공항(소유권-주식지분) 규정(연방) 1997년 공항규정(연방)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호주는 시행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 협정에 따라 비당사국의 서비스 제공자 또는 투자자에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15] 호주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간 혹은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비당사국의 서비스 제공자 또는 투자자에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항공 나. 수산, 또는 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기존의 조치	

[15]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이는 호주-뉴질랜드 경제관계긴밀화무역협정(ANZCERTA)의 기존 또는 향후 의정서에 따라 채택하거나 유지되는 조치들을 포함한다.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에 대한 한국의 유보목록

한국 유보목록을 위한 서설

1. 이 부속서의 한국 유보목록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나호 1 목부터 5 목까지와 다호에 기술된 의무에 대한 한국의 약속을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는 두주

나. 제 1 절에서는, 제 8.9 조(비합치 조치)제 1 항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한국의 기존의 조치

1) 제8.2조(내국민 대우)

2) 제 8.3 조(최혜국 대우)

3) 제 8.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4) 제 8.5 조(국경 간 무역), 또는

5) 제 8.8 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그리고

다. 제 2 절에서는, 제 8.9 조(비합치 조치)제 2 항에 따라, 한국이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

1) 제8.2조 (내국민 대우)

2) 제8.3조 (최혜국 대우)

3) 제8.4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4) 제8.5조 (국경 간 무역), 또는

5) 제8.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제 1 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다. **관련의무**는 제 4 항에 규정된 대로, 제 8.9 조제 1 항가호에 따라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 1 항나호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라. **정부수준**은 유보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마.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 인용된 조치는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바. **유보내용**은 유보된 조치의 일반적이며 비구속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3. 제 2 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다. **관련의무**는 제 8.9 조제 2 항에 따라 그 유보항목에 기재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 1 항다호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라. **정부수준**은 기재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그리고

마.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4. 제 1 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 8.9 조제 1 항가호에 따라, 그리고 제 8.9 조제 1 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적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이 부속서 8-나의 구체적 약속에 불합치하는 한도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 2 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 8.9 조제 2 항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하위분야 및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한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국민,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 8.2 조·제 8.3 조·제 8.4 조 또는 제 8.5 조에 대하여 취하여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 11.3 조(내국민 대우)·제 11.4 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 11.9 조(이행 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7. 양 당사국이 제 8.2 조 또는 제 8.4 조와 불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제 8.10 조 제 1 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정 조치는 아래에 기재된다.

8. 제 7.2 조(내국민 대우)가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한 부속서 I 또는 II 상의 유보항목은 부속서 8-가에 명시된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부여할 제 8.5 조제 1 항 상의 당사국의 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8.2 조 또는 제 8.4 조와 불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제 8.10 조제 1 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 조치

1. 다음의 조치는 제 8.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조치 또는 관련 법의 수정, 개정 또는 변경은 원래의 조치의 취지와 충돌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 8.4 조와 불합치하다고 해석되지 아니할 것이다.

가. 한국에서 설립된 보험회사는 관련 법에 의하여 허용되고 있는 업무만 영위할 수 있다. (보험업법 제 10 조와 제 11 조(법률 제 10394 호, 2010.7.23)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 15 조와 제 16 조(대통령령 제 22637 호, 2011.1.24))

나. 한국의 거주자가 외국의 거주자로부터 공급받은 국경 간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원화로 지급을 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 5 조의 11 및 제 7 조의 8 부터 제 7 조의 10 까지(기획재정부 고시 제 2009-18 호, 2009.9.30))

다. 한국 내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해주도록 요구된다.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제 2 조(금융통화위원회, 1999.8.19), 상호저축은행법 제 11 조(법률 제 8143 호, 2006. 12.3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8 조의 2(대통령령 제 19464 호, 2006.5.3))

라. 순매각 포지션의 합계 또는 순매입 포지션의 합계 중 더 큰 값에 의하여(약식방법) 계산되는 외국환은행의 종합순노출 포지션은 전월말 총 자기자본의 50 퍼센트로 제한된다. (외국환거래법 제 11 조제 2 항(법률 제 9351 호, 2009. 1.30)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 2 조의 9(기획재정부 고시 제 2009-18 호, 2009.9.30))

마. 유가증권 신용공여는 신용한도금액과 수익의 운용에 대한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 투자거래자 또는 투자중개자는 유가증권의 매도와 매입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신용공여가 허용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72 조(법률 제 9407 호, 2009. 2.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9 조(대통령령 제 21291 호, 2009.2.3))

바. 개별 신용카드 소지자에 대한 대여액은 상한이 제한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4 조(법률 제 7929 호, 2006.4.28))

사. 한국에 설립된 은행,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은 관련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다. (은행법 제 27 조 및 제 28 조(법률 제 7428 호, 2005. 3.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0 조 및 제 41 조(법률 제 9407 호, 2009. 2.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 조 및 제 44 조(대통령령 제 21291 호, 2009.2.3))

아. 금융기관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된다. (은행법 제 38 조(법률 제 7428 호, 2005.3.31) 및 보험업법 제 105 조(법률 제 8902 호, 2008.3.14))

자. 한국의 비거주자는 한국에서의 실제적인 이용만을 위하여 외화를 한국 원화로 환전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 7 조의 8 부터 제 7 조의 10 까지, 그리고 제 7 조의 36 부터 제 7 조의 39 까지(기획재정부 고시 제 2009-18 호, 2009.9.30)), 그리고

차. 한국은 예금 이자율·대출 이자율·그 밖의 이자율·예금 만기 및 관련 수수료를 제한할 수 있다. (은행법 제 30 조(법률 제 7428 호, 2005.3.31), 금융기관 여수신이율등에 관한 규정(금융통화위원회, 2003.12.24),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8 조 및 제 15 조(법률 7523 호, 2005.5.3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 조 및 제 9 조(대통령령 19019 호, 2005.8.31))

2. 다음의 조치는 제 8.10 조(예외)제 1 항에 해당되고, 따라서 제 8.2 조(내국민 대우)는 한국이 그 조치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음 조치 또는 관련 법의 개정, 수정 또는 변경 또한 제 8.10 조제 1 항의 범위에 해당될 것이다.

가. 외국보험사 지점의 영업기금은 자본금으로 간주될 것이며, 본점의 자본금은 그러한 지점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액 또는 대출하려고 하는 대부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려되지 아니할 것이다. (보험업법 제 9 조제 3 항(법률 제 8902 호, 2008.3.14))

나. 외국보험사의 한국의 지점은 한국에서 체결된 보험계약에 관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총계에 상당하는 자산을 한국 영역 내에 보유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 75 조(법률 제 8902 호, 2008.3.14))

두주

1. 이 협정상의 이러한 하위분야의 약속은 이 두주 및 아래 유보목록에 규정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수행된다.

2. 제 8.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한 한국의 약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인은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1].

3. 제 8.2 조(내국민 대우) 및 제 8.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따른 한국의 약속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이에 대한 지배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본국에서 동일한 금융서비스의 하위분야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기관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조건으로 한다.

4. 대한민국은 제 8.4 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제 8.9 조제 1 항다호에 따른 자국의 약속을 다음의 방식으로 제한한다. 제 8.9 조제 1 항다호는 제 8.4 조가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만 적용되며, 제 8.4 조나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예를 들면, 파트너십 및 단독소유기업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예치금융기관의 법적형태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두주는 그 자체로 다른 쪽 당사국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제1절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8.4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보험업법 제 91 조(법률 제 7971 호, 2006.8.29) 보험업법 시행령 제 40 조(대통령령 제 19493 호, 2006.5.30)
유보내용	상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또는 투자거래자나 투자중개자의 2 명의 직원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투명성 목적상, 한국은 하나의 은행 소재지에서 보험판매에 전적으로 할당된 창구수와 같이 보험상품의 판매방식을 제한하며 단일 보험업자에 의하여 인수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은행판매비율에 대하여 제한함을 밝힌다.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국경 간 무역(제 8.5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 7100 호, 2004.1.20)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 7186 호, 2004.3.1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 7504 호, 2005.5.2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 7428 호, 2005.3.31)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 7505 호, 2005.5.26) 선원법(법률 제 8041 호, 2006.10.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 7913 호, 2006. 3. 24) 유선 및 도선사업법(법률 제 7985 호, 2006.9.22)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 7279 호, 2004.12.31) 수상레저안전법(법률 제 8016 호, 2006.9.27) 청소년활동진흥법(법률 제 8014 호, 2006.9.2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 7002 호, 2003.12.11) 항공운송사업진흥법(법률 제 6621 호, 2002.1.19) 도로교통법(법률 제 7969 호, 2006.7.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 8050 호, 2006.10.4)

야생동·식물보호법(법률 제 8045 호, 2006.10.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 8138 호, 2006.12.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 7796 호, 2005.12.29)

건설기술관리법(법률 제 7305 호, 2004.12.31)

원자력손해배상법(법률 제 7188 호, 2004.3.11)

화물유통촉진법(법률 제 8014 호, 2006. 9. 27)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 7918 호, 2006.3.24)

낚시어선업법(법률 제 7642 호, 2005.7.29)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 7929 호, 2006.4.28)

전자서명법(법률 제 7813 호, 2005.12.30)

변호사법(법률 제 7894 호, 2006.3.24)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 7425 호, 2005.3.31)

유보내용

한국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이 부속서 8-가에 기재되지 아니한 "강제적인" 보험서비스를 구매할 법적 의무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러한 인이 외국의 영역에서 공급받은 어떠한 그러한 서비스도 고려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요구되는 보험이 한국에 설립된 보험업자로부터 구매될 수 없는 경우, 한국의 영역 밖에서 공급되는 서비스도 법적 의무의 충족 여부에 고려될 수 있다.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2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은행법 제 15 조 및 제 16 조의 2(법률 제 7428 호, 2005.3.31)

은행법 시행령 제 5 조 및 별표(대통령령 제 19422 호, 2006.3.29)

금융지주회사법 제 8 조 및 제 8 조의 2(법률 제 7529 호, 2005.5.31)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 6 조의 3(대통령령 제 19422 호, 2006.3.29)

유보내용

1.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은, 그러한 금융기관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2]인 경우에 한하여, 한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다.

2. 투명성을 목적으로

   가. 금융위원회는 제 1 항에서 기술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에 의한 소유권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승인기준을 적용한다.

   나. 자연인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 주요 사업이 금융서비스가 아닌 금융기관 이외의 기업체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4 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기업체가 4 퍼

[2]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은 한국의 관련 규제당국이 수용가능한 등급으로 국제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금융기관 또는 한국의 관련 규제당국이 수용가능한 대체방식에 의하여 그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입증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능력을 포기하는 경우, 소유권의 비율을 10 퍼센트까지로 증가시킬 수 있다.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2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은행법 제 58 조(법률 제 7428 호, 2005.3.31) 은행업인가지침 제 17 항나호(2004.7.23) 은행업감독규정 제 10 조(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 2006-87 호, 2006.12.28)
유보내용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한국에서의 각 지점 위치는 개별 인가를 요구한다.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한국에 위치한 각 지점은 개별 인가를 요구한다. 외국의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자회사인 은행의 지점은 그러한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8.4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73 조, 제 375 조, 제 379 조 및 제 386 조(법률 제 9407 호, 2009.2.3)
유보내용	한국거래소만이 한국에서 증권 또는 파생상품 시장을 운용할 수 있다.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8.4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94 조부터 제 323 조까지 및 제 166 조(법률 제 9407 호, 2009.2.3)
유보내용	증권예탁결제원만이 한국에서 발행된 상장 및 비상장 증권의 예탁자로서 또는 한국의 공탁자 계정간의 그러한 증권의 이전 매개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8.4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98 조, 제 378 조 및 제 166 조(법률 제 9407 호, 2009.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8 조(대통령령 제 21291 호, 2009.2.3)
유보내용	증권예탁결제원 및 한국거래소만이 한국거래소에서 상장되거나 거래되는 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하여 청산 및 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국경 간 무역(제 8.5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6 조(법률 제 9407 호, 2009.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4 조(대통령령 제 21291 호, 2009.2.3)
유보내용	비전문 투자자(일부 전문 투자자 [3] 포함)가 외화표시 증권 및 외국 증권시장이나 외국 파생상품시장의 장내 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에서 면허를 받은 투자중개자를 통하여 거래한다.

[3]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기획재정부 고시 제 2009-2 호, 2009.2.3)의 기관투자자는 제외한다.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2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은행법 제 62 조 및 제 63 조(법률 제 7428 호, 2005.3.31) 은행법 시행령 제 25 조 및 제 26 조(대통령령 제 19422 호, 2006.3.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65 조(법률 제 9407 호, 2009.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5 조(대통령령 제 21291 호, 2009.2.3)
유보내용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한국 내 지점은 영업기금을 한국 내로 가지고 와서 이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자금은 그러한 지점에 의하여 조달될 자금액 또는 대출될 대부금액을 결정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은행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목적상, 그러한 지점은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설립된 그 은행 또는 그 금융투자회사의 실체와는 별도의 법적 실체로 간주된다.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8.4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신용협동조합법 제 7 조(법률 제 8145 호, 2006.12.30) 상호저축은행법 제 6 조(법률 제 8143 호, 2006.12.3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 조(법률 제 7929 호, 2006.4.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55 조(법률 제 9407 호, 2009.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5 조(법률 제 7883 호, 2006.3.24) 외국환거래법 제 9 조(법률 제 8050 호, 2006.1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54 조, 제 258 조 및 제 263 조(법률 제 9407 호, 2009.2.3)
유보내용	다음 유형의 업무는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지점에 의하여 수행될 수 없다. 가. 신용협동조합 나. 상호저축은행 다. 자본전문금융회사 라. 외화 및 원화자금중개회사 마. 신용정보회사 바. 일반펀드관리회사 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그리고

아. 체권평가회사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8.4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전자금융거래법 제 30 조(법률 제 7929 호, 2006.4.28)
유보내용	한국에서 특정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비금융기관은 자회사로만 설립할 수 있다.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2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제 9703 호, 2009.5.21) 한국정책금융공사법(법률 제9741호, 2009.5.27) 중소기업은행법(법률 제 9460 호, 2009.2.6) 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 제 7882 호, 2006.3.24)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 7638 호, 2005.7.29) 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 7611 호, 2005.7.21)
유보내용	한국은 가. 다음 금융기관[4] (통칭하여 "정부지원기관")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1)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 3) 한국주택금융공사 4) 농업협동조합, 그리고 5) 수산업협동조합 나.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특별 대우를 부여할 수 있다. 1) 정부지원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정부지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 2) 유사한 상태에 있는 비정부지원기관보다 자본 대비 더 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 3) 정부지원기관이 입은 손실의 보전, 또는 4) 자본, 잉여, 이익 또는 자산에 대한 공공자산 및 특정조세의 면제

[4] 이 5 개의 정부지원기관은 제 14 장(경쟁정책)의 제 4 조(경쟁중립성)의 목적상 공기업/국가소유기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8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 16 조(법률 제 7882 호, 2006.3.24) 농업협동조합법 제 49 조(법률 제 7638 호, 2005.7.29) 수산업협동조합법 제 51 조(법률 제 7611 호, 2005.7.21)
유보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최고 및 차상급 경영책임자 및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2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주택법 제 75 조(법률 제 8050 호, 2006.10.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 조제 2 항(국토해양부령 제 168 호, 2009.9.28)
유보내용	한국은 주택청약저축계정과 같은 주택계정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금융기관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 8.4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외국환거래법 제 9 조(법률 제 8050 호, 2006.10.4)
유보내용	한국 원화 현물환 거래의 은행 간 중개업은 그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의 두 개의 중개업자로 제한된다.

제 2 절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국경 간 무역(제 8.5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없음
유보내용	한국은, 한국 내 자연인 또는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이 부속서 8-가에 기재되지 아니한 "강제적인" 제3자 보험서비스를 구매할 법적 의무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외국 영역에서 그러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공급된 어떠한 "강제적인" 제3자 보험서비스도 고려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나, 그 요구되는 보험이 한국에 설립된 보험업자로부터 구매될 수 없는 경우, 한국의 영역 밖에서 공급되는 서비스도 법적 의무의 충족 여부에 고려될 수 있다.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2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없음
유보내용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정부소유 또는 정부지배 기관을 민영화하는 경우에, 한국은 이 기관들의 의무와 배상책임에 대하여 계속적인 보증 또는 한시적인 추가 보증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2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 9407 호, 2009.2.3)
유보내용	한국은 외국 투자자의 한국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의 소유권을 제한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거래소 또는 증권예탁결제원의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 한국은 외국인에 의한 관련 기관의 주식보유를 제한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한국은 가. 공모의 시점에서 외국인의 소유지분이 보전되고, 나. 공모 이후, 그 거래소 또는 그 결제원이 호주 금융기관의 접근을 확실히 하도록 보장한다.

부속서 III
호주의 유보목록

호주 유보목록을 위한 서설

1. 부속서 III의 호주 유보목록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나호 및 다호에 기술된 의무에 대한 호주의 약속을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는 두주

나. 제1절에서는 제8.9조(비합치 조치)제1항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호주의 기존의 조치

1) 제8.2조(내국민 대우)

2) 제8.3조(최혜국 대우)

3) 제8.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 접근)

4) 제8.5조(국경 간 무역), 또는

5) 제8.8조(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그리고

다. 제2절에서는 제8.9조(비합치 조치)제2항에 따라, 호주가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

6) 제 8.2조(내국민 대우)

7) 제8.3조(최혜국 대우)

8) 제8.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 접근)

9) 제8.5조(국경 간 무역), 또는

10) 제8.8조(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2. 1호나목에 기술된 제1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 8.9조제1항에 따라, 기재된 조치(들)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나호에서 언급된 의무(들)을 명시한다.

다. **정부수준**은 기재된 조치(들)을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라. **조치 근거**는 유보된 비합치 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근거 요소에 인용된 조치는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2) 그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 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마. **유보내용**은 유보된 조치의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3. 1호다목에 기술된 제2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 8.9조에 따라 그 유보목록에 기재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다호에서 언급된 의무(들)을 명시한다.

다. **정부수준**은 유보된 조치(들)을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그리고

라.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4. 제1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8.9조제1항가호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조치가 부속서 8-나의 구체적 약속에 불합치하는 한도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2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8.9조제2항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호주가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에 대하여 이 부속서에서 취하여진 그 조치에 대한 목록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11.3조(내국민 대우 - 투자), 제11.4조(최혜국 대우 - 투자) 및 제11.9조(이행요건 - 투자)에 대한 비합치 조치로 작용한다.

두주

1. 제8장 (금융서비스)에 따른 약속은 이 두주 및 아래의 유보목록에 규정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수행된다.

2. 제8.4조에 대한 호주의 약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호주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1].

3. 호주는 제8.4조에 대한 제8.9조제1항다호에 따른 자국의 약속을 다음의 방식으로 제한한다. 제8.9조 제1항다호는 제8.4조가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들에만 적용되며 제8.4조나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III의 호주 또는 한국의 유보목록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제8.10조에 따라 신중함을 이유로 조치들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제8.10조에 따른 호주의 조치 채택 혹은 유지 권리는 부속서III의 "제8.2조 또는 제8.4조와 불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제8.10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 조치"에 있는 한국의 목록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 예를 들면, 파트너십 및 단독소유기업은 일반적으로 호주에서 공인 예치기관의 법적형태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두주는 그 자체로 다른 쪽 당사국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III
호주의 유보목록

제1절

분야	금융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8.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근거	1959년 은행법(연방) 1998년 지급시스템(규정)법(연방)
유보내용	호주에서 예금기관으로 허가 받은 외국은행(외국예금기관)의 지점은 개인 및 비법인 기관으로부터 호주달러 25만 달러 미만의 최초 예치금(및 그 밖의 자금)을 받을 수 없다. 외국은행의 대표사무소는 호주에서 예금을 위한 광고를 포함하여 어떠한 은행영업도 수행할 수 없다. 그러한 대표사무소는 연락처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도록 허용된다.

분야	금융서비스
관련의무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8.8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근거	2001년 회사법(연방) 2001년 회사규정(연방)
유보내용	상장회사의 이사 중 최소 2명은 호주에 상시적으로 거주하여야 한다. 비상장회사의 이사 중 최소 1명은 호주에 상시적으로 거주하여야 한다.

분야	금융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8.4조) 국경 간 무역(제8.5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8.8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지역정부 수준의 모든 기존의 비합치 조치
유보내용	지역정부 수준의 모든 기존의 비합치 조치

분야	금융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근거	1959년 코먼웰스 은행법(연방)
유보내용	이전에 연방정부가 소유하였던 코먼웰스 은행의 부채는 과도적 보증약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2절

분야	금융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정부수준	중앙 및 지역
유보내용	호주는 금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정부소유 실체의 민영화에 관련된 보증을 포함하여 그러한 실체에 대한 정부의 보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2]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 즉, 일반적으로 경쟁을 허용하고 그 공공부문 소유권을 근거로 특정 실체에 순경쟁우위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호주의 경쟁적 중립성 정책의 적용을 제외하고, 제8.1조제3항나목에 따라 제8장(금융서비스)의 적용에서 제외될 조치.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PREAMB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Austral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Reinforcing the longstanding ties of friendship and cooperation between them;

Envisaging that a free trade area will create an expanded and secure market for goods and services in their territories and a stable and predictable environment for investment, thus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ir firms in global markets;

Encouraging 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that will bring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create new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improve living standards for their people;

Seeking to establish clear and mutually advantageous rules governing their trade and investment and to reduce or eliminate the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hem;

Promoting a predictable, transparent, and consistent business environment that will assist enterprises in planning effectively and using resources efficiently;

Desiring to strengthen a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ve framework to foster creativity and innovation, and promote stronger linkage in and between dynamic sectors of their economies;

Recognising that expanding the economic relationship can assist i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its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Building on their respective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other multilateral, regional, and bilateral agreements and arrangements to which the Parties are party; and

Committed to furthering their economic leadership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particular by seeking to reduce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in the region;

Have agreed as follows:

CHAPTER 1
INITIAL PROVISIONS AND DEFINITIONS

Section A: Initial Provisions

ARTICLE 1.1: ESTABLISHMENT OF A FREE TRADE AREA

Consistent with Article XXIV of GATT 1994 and Article V of GATS, the Parties hereby establish a free trade area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TICLE 1.2: RELATION TO OTHER AGREEMENTS

1. Each Party affirms its existing rights and obligations with respect to each other under existing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to which both Parties are party, including the WTO Agreement.

2. This Agreement shall not be construed to derogate from any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 between the Parties that provides for more favourable treatment of goods, services, investments, or persons than that provided for under this Agreement.

3.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in the event of any inconsistency between this Agreement and other agreements to which both Parties are party, the Parties shall immediately consult with each other with a view to finding a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RTICLE 1.3: EXTENT OF OBLIGATIONS

1. In accordance with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a Party's compliance with this Agreement, the exercise of, or failure to exercise, governmental authority of that Party:

   (a) by a central, regional or local level of government; or

   (b) delegated by a central, regional or local level of government,

shall be considered an exercise of, or failure to exercise, governmental authority by a Party.

2. For greater certainty, and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the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s included in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a central, regional and local level of government, and the treatment to be accorded by a Party at a regional or local level of government means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e most favourable treatment that the regional or local level of government accords to any goods, services, persons or investments of investors, as described in those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s, of the Party of which it forms a part.

Section B: General Definitions

ARTICLE 1.4: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unless otherwise specified:

central level of government means:

(a) for Korea, the central level of government; and

(b) for Australia, the Commonwealth Government;

covered investment means, with respect to a Party, an investment, as defined in relevant Chapters, in its territory of an investor of the other Party that is in existence a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or established, acquired, or expanded thereafter;

customs administration means:

(a) for Korea, the Korea Customs Service, or its successor; and

(b) for Australia, the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or its successor;

Customs duty includes any duty or charge of any kind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f a good of the other Party, including any form of surtax or surcharge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such importation, but does not include any:

(a) charge equivalent to an internal tax imposed consistently with Article III:2 of GATT, or any equivalent provision of a successor agreement to which both Parties are party;

(b) additional customs duty collected as a result of a measure consistent with Chapter 6 (Trade Remedies);

(c) fee or other charge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commensurate with the cost of service rendered; or

(d) premiums offered or collected on an imported good arising out of any tendering system in respect of the administration of 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s or tariff rate quotas established in Appendix 2-A-1;

Customs Valuation Agreement means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in Annex 1A of the WTO Agreement;

days means calendar days;

enterprise means any entity constituted or organised under applicable law, whether or not for profit, and whether privately or governmentally owned or controlled, including any corporation, trust, partnership, sole proprietorship, joint venture, association, or similar organisation;

enterprise of a Party means an enterprise constituted or organised under the law of a Party;

existing means in effect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freely usable currency means "freely usable currency" as determined b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under its *Articles of Agreement*;

GATS means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in Annex 1B of the WTO Agreement;

GATT 1994 means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in Annex 1A of the WTO Agreement;

goods of a Party means domestic products as these are understood in GATT 1994 or such goods as the Parties may agree, and includes originating goods of that Party;

government procurement means the process by which a government obtains the use of or acquires goods or services, or any combination thereof, for governmental purposes and not with a view to commercial sale or resale or use in the production or supply of goods or services for commercial sale or resale;

Harmonized System (HS)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governed b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including its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Section Notes and Chapter Notes, as adopted and implemented by the Parties in their respective tariff laws;

Import Licencing Agreement means the *Agreement on Import Licencing Procedures*, in Annex 1A of the WTO Agreement;

Joint Committee means the Joint Committee established in Article 21.3 (Joint Committee);

local level of government means:

(a) for Korea, a local government as defined in the *Local Autonomy Act*; and

(b) for Australia, any government below a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measure includes any law, regulation, procedure, requirement, or practice;

national means:

(a) for Korea, a Korean national within the meaning of the *Nationality Act*; and

(b) for Australia, a natural person who is an Australian citizen as defined in the *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 or a permanent resident as defined in accordance with the *Migration Regulations 1994*;

originating means qualifying under the rules of origin set out in Chapter 3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person means a natural person or an enterprise;

person of a Party means a national or an enterprise of a Party;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means the duty rate applicable under this Agreement to an originating good;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means:

(a) for Korea,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is not applicable; and

(b) for Australia, a state of Australia,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or the Northern Territory;

Safeguards Agreement means the *Agreement on Safeguards*, in Annex 1A of the WTO Agreement;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 means any measure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Annex A of the SPS Agreement;

SPS Agreement means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in Annex 1A of the WTO Agreement;

state enterprise means an enterprise that is owned, or controlled through ownership interests, by a Party[1];

TBT Agreement means 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in Annex 1A of the WTO Agreement;

territory means:

(a) for Korea, the land, maritime, and air space under its sovereignty, and those maritime areas, including the seabed and subsoil adjacent to and beyond the outer limit of the territorial seas over which it may exercise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its law; and

(b) for Australia, the territory of Australia:

(i) excluding all external territories other than the Territory of Norfolk Island, the Territory of Christmas Island, the Territory of Cocos (Keeling) Islands, the Territory of Ashmore and Cartier Islands, the Territory of Heard Island and McDonald Islands, and the Coral Sea Islands Territory; and

(ii) including Australia's territorial sea, contiguous zon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over which Australia exercises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RIPS Agreement means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nnex 1C of the WTO Agreement;

WTO mean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WTO Agreement means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done at Marrakesh on 15 April 1994.

[1] For greater certainty, ownership, or control through ownership interests, may be direct or indirect.

CHAPTER 2
TRADE IN GOODS

ARTICLE 2.1: SCOPE

Unless otherwise provided, this Chapter shall apply to trade in goods of a Party.

ARTICLE 2.2: NATIONAL TREATMENT

Each Party shall accord national treatment to the goods of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III of GATT 1994, including its interpretive notes, and to this end Article III of GATT 1994, including its interpretive notes, is incorporated into and made part of this Agreement, *mutatis mutandis*.

ARTICLE 2.3: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1.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neither Party shall increase any existing customs duty, or adopt any new customs duty, on an originating good.

2.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progressively eliminate its customs duties on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its Schedule to Annex 2-A.

3. If at any moment a Party reduces its applied most-favoured-n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MFN") customs duty rate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at duty rate shall apply as regards trade covered by this Agreement if and for as long as it is lower than the customs duty rat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its Schedule included in Annex 2-A.

4. On request of a Party, the Parties shall consult to consider accelerating the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set out in their Schedules to Annex 2-A. An agreement by the Parties to accelerate the elimination of a customs duty on a good shall supersede any duty rate or staging category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ir Schedules to Annex 2-A for that good when approved by each Party in accordance with its applicable legal procedures.

5. For greater certainty, a Party may raise a customs duty to the level established in its Schedule to Annex 2-A following a temporary unilateral reduction.

ARTICLE 2.4: GOODS RE-ENTERED AFTER REPAIR OR ALTERATION

1. Neither Party shall apply a customs duty to a good, regardless of its origin, that re-enters its territory after that good has been temporarily exported from its territory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for repair or alteration, regardless of whether the repair or alteration:

(a) could be perform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from which the good was exported for repair or alteration; or

(b) may have resulted in an increased value of the good.

2. Neither Party shall apply a customs duty to a good, regardless of its origin, admitted temporarily from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for repair or alteration.

3.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repair or alteration does not include an operation or process that:

(a) destroys a good's essential characteristics or creates a new or commercially different good; or

(b) transforms an unfinished good into a finished good.

ARTICLE 2.5:DUTY-FREE ENTRY OF COMMERCIAL SAMPLES OF NEGLIGIBLE VALUE AND PRINTED ADVERTISING MATERIALS

Each Party shall grant duty-free entry to commercial samples of negligible value, and to printed advertising materials, imported from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regardless of their origin, but may require that:

(a) the samples be imported solely for the solicitation of orders for goods, or services provided from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or a non-Party; or

(b) the advertising materials be imported in packets that each contain no more than one copy of each such material and that neither the materials nor the packets form part of a larger consignment.

ARTICLE 2.6: IMPORT AND EXPORT RESTRICTIONS

1.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neither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any prohibition or restriction on the importation of any good of the other Party or on the exportation or sale for export of any good destined for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except in accordance with Article XI of GATT 1994, including its interpretive notes, and to this end Article XI of GATT 1994, including its interpretive notes, is incorporated into and made part of this Agreement, *mutatis mutandis*.

2. Where a Party proposes to adopt an export prohibition or restriction on foodstuffs or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a) of Article XI of GATT 1994, the Party shall:

(a) seek to limit such proposed prohibition or restriction to the extent necessary, giving due consideration to its possible effects on the other Party's foodstuff or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security;

(b) provide notice in writing, as far in advance as practicable, to the other Party of such proposed prohibition or restriction and its reasons together with its nature and expected duration; and

(c) on request, provide the other Party with a reasonable opportunity for consultation with respect to any matter related to the proposed prohibition or restriction.

ARTICLE 2.7: IMPORT LICENSING

1. Neither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a measure that is inconsistent with the Import Licensing Agreement.

2. Promptly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of its existing import licensing procedures, if any. The notification shall:

(a) include the information specified in Article 5 of the Import Licensing Agreement; and

(b) be without prejudice as to whether the import licensing procedure i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3. Prior to applying any new or modified import licensing procedure, a Party shall publish the new procedure or modification on an official government Internet site or in a single official journal. To the extent possible, the Party shall do so at least 21 days before the new procedure or modification takes effect.

ARTICLE 2.8: ADMINISTRATIVE FEES AND FORMALITIES

1. Each Party shall ensure, in accordance with Article VIII:1 of GATT 1994, including its interpretive notes, that all fees and charges of whatever character (other than customs duties, charges equivalent to an internal tax or other internal charges applied consistently with Article III:2 of GATT 1994, and any additional customs duty collected as a result of a measure consistent with Chapter 6 (Trade Remedies))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or exportation are limited in amount to the approximate cost of services rendered and do not represent an indirect protection to domestic goods or a taxation of imports or exports for fiscal purposes.

2. Neither Party shall require consular transactions, including related fees and charges,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f any good of the other Party.

3. Each Party shall make available and maintain through the Internet a current list of the fees and charges it imposes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or exportation.

ARTICLE 2.9: EXPORT DUTIES, TAXES OR OTHER CHARGES

Neither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any duty, tax or other charge on the export of any good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unless the duty, tax or charge is also adopted or maintained on the good when destined for domestic consumption.

ARTICLE 2.10: NON-TARIFF MEASURES

1. Further to Chapter 19 (Transparency),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e transparency of non-tariff measures affecting trade between the Parties and that any such measures should not create an unnecessary obstacle to trade between the Parties.

2. To this end, the Committee on Trade in Goods established in Article 21.4 (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shall, when a Party identifies a specific non-tariff measure, review that measure. The Committee on Trade in Goods shall review the non-tariff measure only after either Party objectively demonstrates that the relevant coordination mechanism, technical meeting, committee or working group, if any, that is most closely related to such a measure has failed to produce a satisfactory resolution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3. The Committee on Trade in Goods shall, for the non-tariff measure referred to in paragraph 2, consider approaches that may better facilitate trade between the Parties and present to the Parties the results of its consideration, including any recommendations, preferably within 12 months. If necessary, the results of the consideration and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on Trade in Goods shall be submitted to the next meeting of the Joint Committee for consideration and/or action.

ARTICLE 2.11: COMMITTEE ON TRADE IN GOODS

1.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 on Trade in Good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4 (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shall include:

(a) promoting trade in goods between the Parties, including through consultations on accelerating tariff elimination under this Agreement and other issues as appropriate; and

(b) addressing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to trade in goods between the Parties and, if appropriate, referring such matters, with any recommendation, to the Joint Committee for its consideration.

2. The Committee shall meet on request of a Party or the Joint Committee to consider any matters relating to trade in goods.

ARTICLE 2.12: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commercial samples of negligible value means commercial samples having a value, individually or in the aggregate as shipped, of not more than the amount specified in a Party's laws, regulations or procedures governing temporary admission, or so marked, torn, perforated, or otherwise treated that they are unsuitable for sale or use except as commercial samples;

consular transactions means requirements that goods of a Party intended for export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must first be submitted to the supervision of the consul of the impor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consular invoices or consular visas for commercial invoices, certificates of origin, manifests, shippers' export declarations, or any other customs documentation required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import licensing means an administrative procedure requiring the submission of an application or other documentation (other than that generally required for customs clearance purposes) to the relevant administrative body as a prior condition for importation into the territory of the importing Party; and

printed advertising materials means those goods classified in Chapter 49 of the Harmonized System, including brochures, pamphlets, leaflets, trade catalogues, yearbooks published by trade associations, tourist promotional materials and posters, that are used to promote, publicise, or advertise a good or service, or are essentially intended to advertise a good or service, and are supplied free of charge.

ANNEX 2-A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Section A: Tariff Schedule of Korea

1. Relation to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Korea (HSK). The provisions of this Schedule are generally expressed in terms of the HSK,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Schedule, including the product coverage of subheadings of this Schedule, shall be governed by the General Notes, Section Notes, and Chapter Notes of the HSK. To the extent that provisions of this Schedule are identical to the corresponding provisions of the HSK, the provisions of this Schedule shall have the same meaning as the corresponding provisions of the HSK.

2. Base Rates of Customs Duty. The base rates of customs duty set out in this Schedule reflect the Korean Customs Duty most-favoured-nation rates of duty in effect on 1 January 2010.

3. Staging. The following staging categories apply to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by Korea pursuant to Article 2.3:

(a) customs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0" shall be eliminated entirely and such goods shall be free of customs duty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b) customs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3" shall be removed in three equal annual stages beginning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such goods shall be free of customs duty, effective 1 January of year three;

(c) customs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5" shall be removed in five equal annual stages beginning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such goods shall be free of customs duty, effective 1 January of year five;

(d) customs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7" shall be removed in seven equal annual stages beginning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such goods shall be free of customs duty, effective 1 January of year seven;

(e) customs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10" shall be removed in 10 equal annual stages beginning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such goods shall be free of customs duty, effective 1 January of year 10;

(f) customs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12" shall be removed in 12 equal annual stages beginning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such goods shall be free of customs duty, effective 1 January of year 12;

(g) customs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13" shall be removed in 13 equal annual stages beginning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such goods shall be free of customs duty, effective 1 January of year 13;

(h) customs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15" shall be removed in 15 equal annual stages beginning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such goods shall be free of customs duty, effective 1 January of year 15;

(i) customs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17" shall be removed in 17 equal annual stages beginning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such goods shall be free of customs duty, effective 1 January of year 17;

(j) customs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18" shall be removed in 18 equal annual stages beginning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such goods shall be free of customs duty, effective 1 January of year 18;

(k) customs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20" shall be removed in 20 equal annual stages beginning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such goods shall be free of customs duty, effective 1 January of year 20;

(l) customs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B" shall be reduced by 50 per cent in 10 equal annual stages beginning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shall remain at that rate thereafter;

(m) customs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S-1" shall be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i) for goods entered into Korea from 1 December through 30 April, customs duties shall be eliminated entirely and such goods shall be free of customs duty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ii) for goods entered into Korea from 1 May through 30 November, customs duties shall be removed in 15 equal annual stages beginning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such goods shall be free of customs duty, effective 1 January of year 15;

(n) customs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S-2" shall be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i) for goods entered into Korea from 1 October through 31 March, customs duties shall remain at base rates; and

(ii) for goods entered into Korea from 1 April through 30 September, customs duties shall be reduced to 30 per cent *ad valorem*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Beginning 1 January of year two, customs duties shall be removed in six equal annual stages, and such goods shall be free of customs duty, effective 1 January of year seven;

(o) customs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S-3" shall be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i) for goods entered into Korea from 1 October through 31 March, customs duties shall remain at base rates; and

(ii) for goods entered into Korea from 1 April through 30 September, customs duties shall be removed in 18 equal annual stages beginning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such goods shall be free of customs duty, effective 1 January of year 18;

(p) customs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S-4" shall be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i) for goods entered into Korea from 1 May through 30 November, customs duties shall remain at base rates; and

(ii) for goods entered into Korea from 1 December through 30 April, customs duties shall be reduced to 24 per cent *ad valorem*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Beginning 1 January of year two, customs duties shall be removed in four equal annual stages, and such goods shall be free of customs duty, effective 1 January of year five;

(q) customs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S-5" shall be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i) for goods entered into Korea from 1 November through 30 April, customs duties shall remain at base rates; and

(ii) for goods entered into Korea from 1 May through 31 October, customs duties shall be removed in 15 equal annual stages beginning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such goods shall be free of customs duty, effective 1 January of year 15;

(r) customs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E" shall remain at base rates; and

(s) no obligations regarding customs duties in this Agreement shall apply with respect to items in staging category "R".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Korea's rights and obligations with respect to its implementation of the commitments set out in the WTO document WT/Let/492 (*Certification of Modifications and Rectifications to Schedule LX – Republic of Korea*) dated 13 April, 2005 and any amendments thereto.

4. The base rate of customs duty and staging category are indicated in Korea's Schedule.

5. Interim staged rates shall be rounded down, at least to the nearest tenth of a percentage point or, if the rate of customs duty is expressed in monetary units, at least to the nearest Korean won.

6. For the purposes of this Schedule, **year one** means the year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7. For the purposes of this Schedule, beginning in year two, each annual stage of tariff reduction shall take effect on 1 January of the relevant year.

Appendix 2-A-1

Korea

1. This Appendix applies to tariff rate quotas (TRQs)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and sets out modifications to the Harmonized Schedule of Korea (HSK) that reflect the TRQs that Korea shall apply to certain originating goods under this Agreement. In particular, originating goods of Australia included under this Appendix shall be subject to the rates of duty as set out in this Appendix in lieu of the rates of duty specified in Chapters 1-97 of the HSK.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e HSK, originating goods of Australia in the quantities described in this Appendix shall be permitted entry into the territory of Korea as provided in this Appendix. Furthermore, any quantity of originating goods imported from Australia under a TRQ provided for in this Appendix shall not be counted toward the in-quota amount of any TRQ provided for such goods elsewhere in the HSK.

2. Any enterprise or national of a Party that fulfils Korea's importing legal and administrative requirements shall be eligible to be considered for a quota allocation under this TRQ.

3. Each Party shall implement and administer the TRQs set out in this Appendix in accordance with Article XIII of GATT 1994, including its interpretive notes, and the Import Licensing Agreement.

4. Over the course of each year, Korea's administering authority shall publish, in a timely fashion on its designated publicly available Internet site, administration procedures, utilisation rates and remaining available quantities for each TRQ.

5.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of any new or modified administration of a TRQ established in this Appendix prior to its application. On written request of a Party, the Parties shall consult regarding a Party's administration of its TRQs at the next meeting of the Committee on Trade in Goods to arrive at a mutually satisfactory agreement on administration. The Parties shall consider prevailing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in the consultations.

Butter and other fats and oils derived from milk

6. (a) The aggregate quantity of originating goods of Australia described in subparagraph (c) that shall be permitted to enter duty free in a particular year is specified below:

Year	Quantity (Metric Tonnes)
1	113
2	115
3	118
4	120
5	122
6	125
7	127
8	130
9	132
10	135
11	138
12	141
13	143
14	146
15	Unlimited

(b) Duties on goods entered in aggregate quantities in excess of the quantities listed in subparagraph (a) shall be removed in accordance with staging category 15 as described in paragraph 3(h) of Annex 2-A.

(c) Subparagraph (a) applies to the following HSK provisions: 0405100000 and 0405900000.

Fresh, grated or powdered, processed, and all other cheeses

7. (a) The aggregate quantity of originating goods of Australia described in subparagraph (c) that shall be permitted to enter duty free in a particular year is specified below:

Year	Quantity (Metric Tonnes)
1	4,630
2	4,769
3	4,912
4	5,059
5	5,211
6	5,367
7	5,528
8	5,694
9	5,865
10	6,041
11	6,222
12	6,409
13	4,443
14	4,576
15	4,714
16	4,855
17	5,001
18	383
19	394
20	Unlimited

(b) Duties on goods entered in aggregate quantities in excess of the quantities listed in subparagraph (a) shall be removed in accordance with:

(i) staging category 13 as described in paragraph 3(g) of Annex 2-A for the following HSK provision: 0406901000;

(ii) staging category 18 as described in paragraph 3(j) of Annex 2-A for the following HSK provisions: 0406101010,0406101020, 0406101090 and 0406300000; and

(iii) staging category 20 as described in paragraph 3(k) of Annex 2-A for the following HSK provisions: 0406200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and 0406909000.

(c) Subparagraph (a) applies to the following HSK provisions:

(i) from year 1 through year 12, 0406101010, 0406101020, 0406101090, 0406200000, 0406300000, 0406901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and 0406909000;

(ii) from year 13 through year 17, 0406101010, 0406101020, 0406101090, 0406200000, 0406300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and 0406909000; and

(iii) from year 18 through year 19, 0406200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and 0406909000.

Oranges

8. (a) The aggregate quantity of originating goods of Australia described in subparagraph (c) that shall be permitted to enter duty free in a particular year is specified below:

Year	Quantity (Metric Tonnes)
1	20
2	20
3	20
4	20
5	20
6	20
7	30
8	30
9	30
10	30

After year 10, the in-quota quantity shall remain the same as the quantity of year 10.

(b) Duties on goods entered in aggregate quantities in excess of the quantities listed in subparagraph (a) shall be treated in accordance with staging category S-2 as described in paragraph 3(n) of Annex 2-A.

(c) Subparagraph (a) applies to the following HSK provision: 0805100000.

Malt and malting barley

9. (a) The aggregate quantity of originating goods of Australia described in subparagraph (c) that shall be permitted to enter duty free in a particular year is specified below:

Year	Quantity (Metric Tonnes)
1	10,000
2	10,200
3	10,404
4	10,612
5	10,824
6	11,041
7	11,262
8	11,487
9	11,717
10	11,951
11	12,190
12	12,434
13	12,682
14	12,936
15	Unlimited

(b) Duties on goods entered in aggregate quantities in excess of the quantities listed in subparagraph (a) shall be removed in accordance with staging category 15 as described in paragraph 3(h) of Annex 2-A.

(c) Subparagraph (a) applies to the following HSK provisions: 1003001000 and 1107100000.

Soybeans for human consumption, identity-preserved

10. (a) The aggregate quantity of originating goods of Australia described in subparagraph (d) that shall be permitted to enter duty free in a particular year is specified below:

Year	Quantity (Metric Tonnes)
1	500
2	550
3	600
4	650
5	700
6	750
7	800
8	850
9	900
10	950
11	1,000

After year 11, the in-quota quantity shall remain the same as the quantity of year 11.

(b) Identity-preserved soybeans means a shipment of soybeans containing not less than 95 per cent of any single variety of soybean and not more than 1 per cent of foreign material. Identity preserved soybeans may not be shipped in bulk, but shall be shipped in bags or containers.

(c) Duties on goods entered in aggregate quantities in excess of the quantities listed in subparagraph (a) shall be treated in accordance with staging category E as described in paragraph 3(r) of Annex 2-A.

(d) Subparagraph (a) applies to the following HSK provisions: 1201009010 and 1201009090.

Fodder, other

11. (a) The aggregate quantity of originating goods of Australia described in subparagraph (c) that shall be permitted to enter duty free in a particular year is specified below:

Year	Quantity (Metric Tonnes)
1-14	50,000(per year)
15	unlimited

(b) Duties on goods entered in aggregate quantities in excess of the quantities listed in subparagraph (a) shall be removed in accordance with staging category 15 as described in paragraph 3(h) of Annex 2-A.

(c) Subparagraph (a) applies to the following HSK provision: 1214909090.

Prepared dry milk and other

12. (a) The aggregate quantity of originating goods of Australia described in subparagraph (c) that shall be permitted to enter duty free in a particular year is specified below:

Year	Quantity (Metric Tonnes)
1	470
2	484
3	499
4	514
5	529
6	545
7	561
8	578
9	595
10	613
11	632
12	651
13	35
14	36
15	Unlimited

(b) Duties on goods entered in aggregate quantities in excess of the quantities listed in subparagraph (a) shall be removed in accordance with:

(i) staging category 13 as described in paragraph 3(g) of Annex 2-A for the following HSK provision: 1901101010; and

(ii) staging category 15 as described in paragraph 3(h) of Annex 2-A for the following HSK provision: 1901101090.

(c) Subparagraph (a) applies to the following HSK provisions:

(i) from year 1 through year 12, 1901101010 and 1901101090; and

(ii) from year 13 through year 14, 190110109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0101101000	Horses (for farm breeding)	0	0	
0101109000	Other	8	10	
0101901010	Horses for racing	8	5	
0101901090	Other	8	10	
0101909000	Other	8	10	
0102101000	Milch cows	89.1	5	
0102102000	Beef cattle	89.1	5	
0102109000	Other	89.1	0	
0102901000	Milch cows	40	E	
0102902000	Beef cattle	40	E	
0102909000	Other	0	0	
0103100000	Pure-bred breeding animals	18	0	
0103910000	Weighing less than 50 kg	18	5	
0103920000	Weighing 50 kg or more	18	3	
0104101000	Pure-bred breeding animals	0	0	
0104109000	Other	8	15	
0104201000	Milch goats	8	10	
0104209000	Other	8	0	
0105111000	Pure-bred breeding animals	9	15	
0105119000	Other	9	5	
0105120000	Turkeys	9	0	
0105191010	Pure-bred breeding animals	0	0	
0105191090	Other	18	0	
0105199000	Other	9	0	
0105941000	Pure-bred breeding animals	9	0	
0105949000	Other	9	0	
0105991010	Pure-bred breeding animals	0	0	
0105991090	Other	18	3	
0105992000	Turkeys	9	3	
0105999000	Other	9	3	
0106110000	Primates	8	0	
0106120000	Whales, dolphins and porpoises (mammals of the order Cetacea); manatees and dugongs (mammals of the order Sirenia)	8	3	
0106191000	Dogs	8	5	
0106192010	Pure-bred breeding animals	0	0	
0106192090	Other	8	0	
0106193000	Deer	8	10	
0106194000	Bears	8	3	
0106195010	Pure-bred breeding animals	0	0	
0106195090	Other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0106196010	Pure-bred breeding animals	0	0	
0106196090	Other	8	3	
0106199000	Other	8	7	
0106201000	Snakes	8	3	
0106202000	Fresh-water tortoises	8	3	
0106203000	Turtles	8	0	
0106209000	Other	8	5	
0106310000	Birds of prey	8	7	
0106320000	Psittaciformes (including parrots, parakeets, macaws and cockatoos)	8	7	
0106390000	Other	8	0	
0106901000	Amphibia	8	0	
0106902010	Honey bees	8	10	
0106902090	Other	8	0	
0106903010	Lug worms	8	0	
0106903020	Sludge worms	8	0	
0106903090	Other	8	0	
0106909000	Other	8	0	
0201100000	Carcasses and half-carcasses	40	15	See Annex 6-A
0201201000	Short ribs	40	15	See Annex 6-A
0201209000	Other	40	15	See Annex 6-A
0201300000	Boneless	40	15	See Annex 6-A
0202100000	Carcasses and half-carcasses	40	15	See Annex 6-A
0202201000	Short ribs	40	15	See Annex 6-A
0202209000	Other	40	15	See Annex 6-A
0202300000	Boneless	40	15	See Annex 6-A
0203110000	Carcasses and half-carcasses	22.5	5	
0203120000	Hams, shoulders and cuts thereof, with bone in	22.5	5	
0203191000	Streaky pork	22.5	10	
0203199000	Other	22.5	15	
0203210000	Carcasses and half-carcasses	25	E	
0203220000	Hams, shoulders and cuts thereof, with bone in	25	E	
0203291000	Streaky pork	25	E	
0203299000	Other	25	5	
0204100000	Carcasses and half-carcasses of lamb, fresh or chilled	22.5	10	
0204210000	Carcasses and half-carcasses	22.5	10	
0204220000	Other cuts with bone in	22.5	10	
0204230000	Boneless	22.5	10	
0204300000	Carcasses and half-carcasses of lamb, frozen	22.5	10	
0204410000	Carcasses and half-carcasses	22.5	10	
0204420000	Other cuts with bone in	22.5	10	
0204430000	Boneless	22.5	10	
0204501000	Fresh or chilled	22.5	10	
0204502000	Frozen	22.5	10	
0205001000	Fresh or chilled	27	15	
0205002000	Frozen	27	15	
0206100000	Of bovine animals, fresh or chilled	18	15	
0206210000	Tongues	18	15	
0206220000	Livers	18	15	
0206291000	Tails	18	15	
0206292000	Feet	18	15	
0206299000	Other	18	15	
0206300000	Of swine, fresh or chilled	18	7	
0206410000	Livers	18	5	
0206491000	Feet	18	7	
0206499000	Other	18	5	
0206800000	Other, fresh or chilled	18	15	
0206900000	Other, frozen	18	15	
0207111000	Weighing not more than 550 g	18	18	
0207119000	Other	18	18	
0207121000	Weighing not more than 550 g	20	18	
0207129000	Other	20	18	
0207131010	Leg	18	18	
0207131020	Breast	18	18	
0207131030	Wing	18	18	
0207131090	Other	18	18	
0207132010	Liver	22.5	18	
0207132090	Other	27	18	
0207141010	Leg	20	E	
0207141020	Breast	20	18	
0207141030	Wing	20	18	
0207141090	Other	20	18	
0207142010	Liver	22.5	18	
0207142090	Other	27	18	
0207240000	Not cut in pieces, fresh or chilled	18	10	
0207250000	Not cut in pieces, frozen	18	10	
0207261000	Cuts	18	1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0207262010	Liver	22.5	15	
0207262090	Other	27	15	
0207271000	Cuts	18	18	
0207272010	Liver	22.5	10	
0207272090	Other	27	15	
0207320000	Not cut in pieces, fresh or chilled	18	15	
0207330000	Not cut in pieces, frozen	18	18	
0207340000	Fatty livers, fresh or chilled	22.5	15	
0207351000	Cuts	18	15	
0207352010	Liver	22.5	15	
0207352090	Other	27	15	
0207361000	Cuts	18	18	
0207362010	Liver	22.5	15	
0207362090	Other	27	15	
0208100000	Of rabbits or hares	22.5	15	
0208300000	Of primates	18	7	
0208400000	Of whales, dolphins and porpoises (mammals of the order Cetacea); of manatees and dugongs (mammals of the order Sirenia)	30	3	
0208500000	Of reptiles (including snakes and turtles)	18	0	
0208901000	Of deer	27	10	
0208909010	Of marine animals	30	0	
0208909090	Other	18	15	
0209001000	Pig fat	3	0	
0209002000	Poultry fat	3	0	
0210110000	Hams, shoulders and cuts thereof, with bone in	25	5	
0210120000	Bellies (streaky) and cuts thereof	30	5	
0210190000	Other	25	5	
0210201000	Dried or smoked	27	15	
0210209000	Other	27	15	
0210910000	Of primates	22.5	10	
0210920000	Of whales, dolphins and porpoises (mammals of the order Cetacea); of manatees and dugongs (mammals of the order Sirenia)	22.5	10	
0210930000	Of reptiles (including snakes and turtles)	22.5	10	
0210991010	Of bovine animals	22.5	15	
0210991020	Of swine	22.5	5	
0210991030	Of poultry	22.5	10	
0210991090	Other	22.5	10	
0210999010	Of sheep or goats	22.5	10	
0210999020	Of poultry	22.5	10	
0210999090	Other	22.5	10	
0301101000	Fancy carp	10	5	
0301102000	Tropical fish	10	7	
0301109000	Other	10	3	
0301911000	Salmo trutta, Oncorhynchus mykiss, Oncorhynchus clarki, Oncorhynchus aguabonita, Oncorhynchus gilae	10	3	
0301912000	Oncorhynchus apache and Oncorhynchus chrysogaster	10	3	
0301921000	Glass eel (for aquaculture)	0	0	
0301929000	Other	27% or 1,879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E	
0301930000	Carp	10	0	
0301940000	Bluefin tunas (Thunnus thynnus)	10	3	
0301950000	Southern bluefin tunas (Thunnus maccoyii)	10	5	
0301992000	Yellow tail	10	0	
0301994010	Fry (for aquaculture)	0	0	
0301994090	Other	31% or 2,272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5	
0301995000	Conger eel	10	7	
0301996000	Sharp toothed eel	10	0	
0301997000	Hagfish	10	0	
0301998000	Flat fish	10	3	
0301999010	True bass	10	3	
0301999020	Puffers	10	0	
0301999030	Tilapia	10	0	
0301999040	Rock fish (including pacific ocean perch)	10	3	
0301999051	Fry (for aquaculture)	0	0	
0301999059	Other	31	7	
0301999060	Mullets	10	0	
0301999070	Loaches	1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0301999080	Cat fishes	10	0	
0301999091	Rock Trout (Hexagrammos spp., Agrammus spp.)	10	0	
0301999092	Crusian carp	10	0	
0301999093	Salmon	10	5	
0301999094	Grass carp	10	0	
0301999095	Croakers	31	10	
0301999099	Other	10	10	
0302111000	Salmo trutta, Oncorhynchus mykiss, Oncorhynchus clarki, Oncorhynchus aquabonita, Oncorhynchus gilae	20	10	
0302112000	Oncorhynchus apache and Oncorhynchus chrysogaster	20	10	
0302120000	Pacific salmon (Oncorhynchus nerka, Oncorhynchus gorbuscha, Oncorhynchus keta, Oncorhynchus tschawytscha, Oncorhynchus kisutch, Oncorhynchus masou and Oncorhynchus rhodurus), Atlantic salmon (Salmo salar) and Danube salmon (Hucho hucho)	20	0	
0302190000	Other	20	10	
0302210000	Halibut (Reinhardtius hippoglossoides, Hippoglossus hippoglossus, Hippoglossus stenolepis)	20	3	
0302220000	Plaice (Pleuronectes platessa)	20	7	
0302230000	Sole (Solea spp.)	20	10	
0302290000	Other	20	3	
0302310000	Albacore or longfinned tunas (Thunnus alalunga)	20	7	
0302320000	Yellowfin tunas (Thunnus albacares)	20	5	
0302330000	Skipjack or stripe-bellied bonito	20	10	
0302340000	Bigeye tunas (Thunnus obesus)	20	3	
0302350000	Bluefin tunas (Thunnus thynnus)	20	5	
0302360000	Southern bluefin tunas (Thunnus maccoyii)	20	0	
0302390000	Other	20	3	
0302400000	Herrings (Clupea harengus, Clupea pallasii), excluding livers and roes	20	0	
0302500000	Cod (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rocephalus), excluding livers and roes	20	10	
0302610000	Sardines (Sardina pilchardus, Sardinops spp.), sardinella(Sardinella spp.), brisling or sprats (Sprattus sprattus)	20	5	
0302620000	Haddock (Melanogrammus aeglefinus)	20	0	
0302630000	Coalfish (Pollachius virens)	20	3	
0302640000	Mackerel (Scomber scombrus, Scomber australasicus, Scomber japonicus)	20	3	
0302650000	Dogfish and other sharks	20	3	
0302660000	Eels (Anguilla spp.)	20	10	
0302670000	Swordfish (Xiphias gladius)	20	7	
0302680000	Toothfish (Dissostichus spp.)	20	5	
0302691000	Alaska pollack	20	10	
0302692000	Yellow tail	20	0	
0302693000	Hair tail	20	10	
0302694000	Sea-bream	20	7	
0302695000	Conger eel	20	7	
0302696000	Sharp toothed eel	20	0	
0302697000	Horse mackerel	20	10	
0302698000	Saury (including horn fish)	20	0	
0302699010	Chub mackerel	20	5	
0302699020	Puffers	20	0	
0302699030	Pomfret	20	0	
0302699040	Angler (Monkfish)	20	10	
0302699090	Other	20	7	
0302701000	Livers	20	0	
0302702000	Roes	20	0	
0303110000	Sockeye salmon (red salmon) (Oncorhynchus nerka)	10	0	
0303190000	Other	10	1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0303210000	Trout (Salmo trutta, Oncorhynchus mykiss, Oncorhynchus clarki, Oncorhynchus aguabonita, Oncorhynchus gilae, Oncorhynchus apache and Oncorhynchus chrysogaster)	10	15	
0303220000	Atlantic salmon (Salmo salar) and Danube salmon (Hucho hucho)	10	0	
0303290000	Other	10	10	
0303310000	Halibut (Reinhardtius hippoglossoides, Hippoglossus hippoglossus, Hippoglossus stenolepis)	10	15	
0303320000	Plaice (Pleuronectes platessa)	10	12	
0303330000	Sole (Solea spp.)	10	10	
0303390000	Other	10	15	
0303410000	Albacore or longfinned tunas (Thunnus alalunga)	10	10	
0303420000	Yellowfin tunas (Thunnus albacares)	10	15	
0303430000	Skipjack or stripe-bellied bonito	10	12	
0303440000	Bigeye tunas (Thunnus obesus)	10	15	
0303450000	Bluefin tunas (Thunnus thynnus)	10	15	
0303460000	Southern bluefin tunas (Thunnus maccoyii)	10	3	
0303490000	Other	10	10	
0303510000	Herrings (Clupea harengus, Clupea pallasii)	10	0	
0303520000	Cod (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rocephalus)	10	10	
0303610000	Swordfish (Xiphias gladius)	10	12	
0303620000	Toothfish (Dissostichus spp.)	10	5	
0303710000	Sardines (Sardina pilchardus, Sardinops spp.), sardinella (Sardinella spp.), brisling or sprats (Sprattus sprattus)	10	7	
0303720000	Haddock (Melanogrammus aeglefinus)	10	0	
0303730000	Coalfish (Pollachius virens)	10	12	
0303740000	Mackerel (Scomber scombrus, Scomber australasicus, Scomber japonicus)	10	15	
0303750000	Dogfish and other sharks	10	10	
0303760000	Eels (Anguilla spp.)	10	10	
0303770000	Sea bass (Dicentrarchus labrax, Dicentrarchus punctatus)	10	0	
0303780000	Hake (Merluccius spp., Urophycis spp.)	10	15	
0303791000	Alaska pollack	30	E	
0303792000	Sable fish	10	15	
0303793000	Hair tail	10	12	
0303794010	Red horsehead fish (Branchiostegus Japonicus)	10	12	
0303794090	Other	10	15	
0303795000	Conger eel	10	10	
0303796000	Yellow corvina	10	15	
0303797000	Horse mackerel	10	10	
0303798000	Saury (including horn fish)	31	10	
0303799010	Chub mackerel	10	10	
0303799020	Puffers	10	7	
0303799030	White sea smelt	10	0	
0303799040	Thorny head	10	0	
0303799050	John dory	10	0	
0303799060	Atka mackerel	10	0	
0303799070	Rock fish (including pacific ocean perch)	10	12	
0303799080	Whip tail or hoki	10	5	
0303799091	Angler (Monkfish)	10	12	
0303799092	Hagfish (Pacific, Atlantic)	10	10	
0303799093	Skates	10	12	
0303799094	Milk fish	10	0	
0303799095	Croakers	50	15	
0303799096	Ray	10	10	
0303799097	Sand lance	10	10	
0303799098	Toothfish, other than Dissostichus spp.	10	12	
0303799099	Other	10	12	
0303801000	Livers	10	0	
0303802010	Of alaska pollack	10	10	
0303802090	Other	10	10	
0304111000	Fillets	20	3	
0304112000	Fish surimi	20	3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0304119000	Other	20	3	
0304121000	Fillets	20	7	
0304122000	Fish surimi	20	7	
0304129000	Other	20	5	
0304191010	Fillets	20	5	
0304191020	Fish surimi	20	5	
0304191090	Other	20	5	
0304192010	Fillets	20	0	
0304192020	Fish surimi	20	0	
0304192090	Other	20	0	
0304193010	Fillets	20	5	
0304193020	Fish surimi	20	5	
0304193090	Other	20	5	
0304199010	Fillets	20	5	
0304199020	Fish surimi	20	5	
0304199090	Other	20	5	
0304210000	Swordfish (Xiphias gladius)	10	10	
0304220000	Toothfish (Dissostichus spp.)	10	12	
0304291000	Of alaska pollack	10	10	
0304292000	Of conger-eel	10	7	
0304293000	Of cod	10	15	
0304294000	Of plaice	10	15	
0304295000	Of bluefin tunas	10	15	
0304296000	Of toothfish, other than Dissostichus spp.	10	12	
0304297000	Of tilapia	10	0	
0304298000	Of file fish	10	0	
0304299000	Other	10	3	
0304911000	Frozen fish surimi	10	10	
0304919000	Other	10	10	
0304921000	Frozen fish surimi	10	10	
0304929000	Other	10	5	
0304991010	Frozen fish surimi	10	10	
0304991090	Other	10	5	
0304999010	Frozen fish surimi	10	5	
0304999090	Other	10	3	
0305100000	Flours, meals and pellets of fish, fit for human consumption	20	0	
0305201000	Livers	20	0	
0305202000	Roes, dried	20	3	
0305203000	Roes, smoked	20	3	
0305204010	Of alaska pollack	20	10	
0305204020	Of yellow corvina	20	3	
0305204030	Of herrings	20	0	
0305204090	Other	20	7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0305301000	Dried	20	3	
0305302000	Salted or in brine	20	3	
0305410000	Pacific salmon (Oncorhynchus nerka, Oncorhynchus gorbuscha, Oncorhynchus keta, Oncorhynchus tschawytscha, Oncorhynchus kisutch, Oncorhynchus masou and Oncorhynchus rhodurus), Atlantic salmon (Salmo salar) and Danube salmon (Hucho hucho)	20	0	
0305420000	Herrings (Clupea harengus, Clupea pallasii)	20	0	
0305491000	Anchovies	20	3	
0305492000	Alaska pollack	20	5	
0305499000	Other	20	3	
0305510000	Cod (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rocephalus)	20	5	
0305591000	Sharks' fins	20	10	
0305592000	Anchovy	20	12	
0305593000	Alaska pollack	20	5	
0305594000	Yellow corvina	20	10	
0305595000	Puffers	20	0	
0305596000	Sharp toothed eel	20	0	
0305597000	Sand lance	20	3	
0305598000	Blenny or gunnel, including juvenile white bait	20	0	
0305599000	Other	20	3	
0305610000	Herrings (Clupea harengus, Clupea pallasii)	20	0	
0305620000	Cod (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rocephalus)	20	3	
0305631000	Salt fermented anchovy	20	12	
0305639000	Other	20	7	
0305691000	Salmon	20	7	
0305692000	Trout	20	10	
0305693000	Hair tail	20	3	
0305694000	Sardines	20	3	
0305695000	Mackerel	20	10	
0305696000	Yellow corvina	20	3	
0305697000	Horse mackerel	20	0	
0305698000	Saury (including horn fish)	20	0	
0305699000	Other	20	3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0306110000	Rock lobster and other sea crawfish (Palinurus spp., panulirus spp., Jasus spp.)	20	3	
0306120000	Lobsters (Homarus spp.)	20	5	
0306131000	Peeled	20	5	
0306139000	Other	20	10	
0306141000	Crab meat	20	12	
0306142000	King crabs	20	5	
0306143000	Blue crab	14	15	
0306149000	Other	14	12	
0306190000	Other, including flours, meals and pellets of crustaceans, fit for human consumption	20	15	
0306210000	Rock lobster and other sea crawfish (Palinurus spp., panulirus spp., Jasus spp.)	20	3	
0306220000	Lobsters (Homarus spp.)	20	7	
0306231000	Live, fresh or chilled	20	7	
0306232000	Dried	20	7	
0306233000	Salted or in brine	42% or 283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7	
0306241010	Blue crab	20	7	
0306241020	Snow crab	20	12	
0306241090	Other	20	7	
0306242000	Dried	20	5	
0306243000	Salted or in brine	20	3	
0306291000	Live, fresh or chilled	20	7	
0306292000	Dried	20	10	
0306293000	Salted or in brine	20	5	
0307101011	For seed	0	0	
0307101019	Other	5	0	
0307101090	Other	20	7	
0307102000	Frozen	20	E	
0307103000	Dried	20	12	
0307104000	Salted or in brine	20	3	
0307210000	Live, fresh or chilled	20	10	
0307291000	Frozen	20	10	
0307292000	Dried	20	3	
0307293000	Salted or in brine	20	3	
0307310000	Live, fresh or chilled	20	7	
0307391000	Frozen	20	12	
0307392000	Dried	20	10	
0307399000	Other	20	3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0307411000	Cuttle fish	10	3	
0307412000	Squid	10	5	
0307491010	Cuttle fish	10	5	
0307491020	Squid	22	15	
0307492000	Salted or in brine	10	10	
0307493000	Dried	10	7	
0307511000	Poulp squid	20	7	
0307512000	Webfoot Octopus	20	7	
0307519000	Other	20	7	
0307591010	Octopus	20	7	
0307591020	Poulp squid	20	10	
0307591030	Webfoot octopus	20	10	
0307591090	Other	20	3	
0307592000	Dried	20	10	
0307599000	Other	20	7	
0307600000	Snails, other than sea snails	20	0	
0307911110	Hard clam spat	20	0	
0307911190	Other	20	0	
0307911200	Abalone	20	E	
0307911300	Top shells	20	0	
0307911410	For seed	0	0	
0307911490	Other	20	0	
0307911510	For seed	0	0	
0307911590	Other	20	3	
0307911600	Cockles	20	0	
0307911700	Adductors of shell fish	20	3	
0307911800	Baby clams	20	0	
0307911910	Marsh clams	20	0	
0307911990	Other	20	7	
0307919010	Sea-urchins	20	5	
0307919020	Sea-cucumbers	20	3	
0307919031	For seed	0	0	
0307919039	Other	20	0	
0307919040	Jelly fish	20	7	
0307919090	Other	20	5	
0307991110	Cockles	20	5	
0307991120	Hen clams	20	3	
0307991130	Baby clams	20	5	
0307991140	Adductors of shell fish	20	3	
0307991150	Ark shells	20	10	
0307991160	Top shells (frozen)	20	12	
0307991190	Other	20	10	
0307991910	Sea-cucumbers	20	3	
0307991920	Sea-squirts	20	10	
0307991990	Other	20	5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0307992110	Hen clams	20	3	
0307992120	Adductors of shell fish	20	3	
0307992130	Baby clams	20	0	
0307992190	Other	20	10	
0307992920	Sea-cucumbers	20	3	
0307992930	Sea-squirts	20	5	
0307992990	Other	20	5	
0307993110	Hen clams	20	3	
0307993120	Baby clams	20	0	
0307993130	Top shells (salted or brine)	20	5	
0307993190	Other	20	3	
0307993910	Sea-urchins	20	5	
0307993920	Sea-cucumbers	20	3	
0307993930	Jelly fish	20	3	
0307993990	Other	20	5	
0401100000	Of a fat content, by weight, not exceeding 1 %	36	20	
0401200000	Of a fat content, by weight, exceeding 1 % but not exceeding 6 %	36	20	
0401301000	Frozen cream	36	13	
0401309000	Other	36	17	
0402101010	Skim milk powder	176	E	
0402101090	Other	176	E	
0402109000	Other	176	E	
0402211000	Whole milk powder	176	E	
0402219000	Other	176	E	
0402290000	Other	176	E	
0402911000	Evaporated milk	89	E	
0402919000	Other	89	E	
0402991000	Sweetened evaporated milk	89	E	
0402999000	Other	89	E	
0403101000	Fluid	36	15	
0403102000	Frozen	36	15	
0403109000	Other	36	15	
0403901000	Butter milk	89	E	
0403902000	Curdled milk and cream	36	E	
0403903000	Kephir	36	E	
0403909000	Other fermented or acidified milk and cream	36	E	
0404101011	For feeding	49.5	5	
0404101019	Other	49.5	15	
0404101091	For feeding	49.5	5	
0404101099	Other	49.5	15	
0404102111	For feeding	49.5	5	
0404102119	Other	49.5	15	
0404102121	For feeding	49.5	5	
0404102129	Other	49.5	15	
0404102131	For feeding	49.5	5	
0404102139	Other	49.5	15	
0404102191	For feeding	49.5	5	
0404102199	Other	49.5	15	
0404102910	For feeding	49.5	5	
0404102990	Other	49.5	15	
0404901000	Of a fat content, by weight, not exceeding 1.5 %	36	13	
0404902000	Of a fat content, by weight, exceeding 1.5 %	36	15	
0405100000	Butter	89	See paragraph 6 Appendix 2A-1 of the schedule of Korea	
0405200000	Dairy spreads	8	3	
0405900000	Other	89	See paragraph 6 Appendix 2A-1 of the schedule of Korea	
0406101010	Mozzarella cheese	36	See paragraph 7 Appendix 2A-1 of the schedule of Korea	
0406101020	Cream cheese	36	See paragraph 7 Appendix 2A-1 of the schedule of Korea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0406101090	Other	36	See paragraph 7 Appendix 2A-1 of the schedule of Korea	
0406102000	Curd	36	15	
0406200000	Grated or powdered cheese, of all kinds	36	See paragraph 7 Appendix 2A-1 of the schedule of Korea	
0406300000	Processed cheese, not grated or powdered	36	See paragraph 7 Appendix 2A-1 of the schedule of Korea	
0406400000	Blue-veined cheese and other cheese containing veins produced by Penicillium roqueforti	36	15	
0406901000	Cheddar cheese	36	See paragraph 7 Appendix 2A-1 of the schedule of Korea	
0406902000	Gouda cheese	36	See paragraph 7 Appendix 2A-1 of the schedule of Korea	
0406903000	Camembert cheese	36	See paragraph 7 Appendix 2A-1 of the schedule of Korea	
0406904000	Emmental cheese	36	See paragraph 7 Appendix 2A-1 of the schedule of Korea	
0406909000	Other	36	See paragraph 7 Appendix 2A-1 of the schedule of Korea	
0407001010	Pure-bred breeding eggs	27	18	
0407001090	Other	27	18	
0407009000	Other	27	15	
0408110000	Dried	27	15	
0408190000	Other	27	15	
0408910000	Dried	27	15	
0408991000	Of fowls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41.6	15	
0408999000	Other	27	15	
0409000000	Natural honey	243% or 1,864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E	
0410001000	Turtles' eggs	8	0	
0410002000	Salanganes' nests	8	0	
0410003000	Royal jelly	8	E	
0410009000	Other	8	0	
0501000000	Human hair, unworked, whether or not washed or scoured; waste of human hair	3	0	
0502100000	Pigs', hogs' or boars' bristles and hair and waste thereof	3	0	
0502902000	Goat hair	3	0	
0502909000	Other	3	0	
0504001010	Of bovine	27	15	
0504001090	Other	27	E	
0504002000	Bladders	27	10	
0504003000	Stomachs	27	15	
0505100000	Feathers of a kind used for stuffing; down	3	5	
0505901000	Powder of feathers	5	7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0505909000	Other	5	7	
0506100000	Ossein and bones treated with acid	3	0	
0506901010	Of tigers	3	0	
0506901020	Of bovine animals	9	5	
0506901090	Other	3	0	
0506902000	Powder of bones	25.6	10	
0506909000	Other	3	0	
0507101000	Ivory of elephant	8	0	
0507102000	Rhinoceros horns	8	0	
0507109000	Other	8	7	
0507901110	In whole	20	E	
0507901190	Other	20	E	
0507901200	Antlers	20	E	
0507902010	Tortoise shells and plates	8	5	
0507902020	Whalebone and whalebone hair	8	3	
0507902030	Pangolin shells and scales	8	5	
0507902040	Hooves and claws (including nails)	8	5	
0507902090	Other	8	3	
0508001000	Coral	8	0	
0508002010	Mother of pearl shells	8	0	
0508002020	Abalone shells	8	0	
0508002030	Oyster shells	8	0	
0508002040	Snail shells	8	0	
0508002050	Trocus shells	8	0	
0508002060	Agoya shells	8	0	
0508002070	Fresh water shells (Megalonaiasnervosa, Amblemaplicata, Quadrula quadrula spp.)	8	0	
0508002090	Other	8	0	
0508009000	Other	8	0	
0510001000	Ambergris	8	3	
0510002000	Castoreum	8	3	
0510003000	Musk	8	15	
0510004000	Ox bezoar	8	0	
0510005000	Pteropi faeces	8	0	
0510009010	Pancreas	8	3	
0510009020	Bile	8	3	
0510009030	Gecko	8	0	
0510009090	Other	8	0	
0511100000	Bovine semen	0	0	
0511911010	Brine shrimp eggs	8	0	
0511911090	Other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0511912000	Fish waste	5	0	
0511919000	Other	8	3	
0511991000	Animal blood	8	7	
0511992010	Swine semen	0	0	
0511992090	Other	0	0	
0511993010	Of bovine	18	15	
0511993020	Of swine	18	15	
0511993090	Other	0	0	
0511994000	Sinews and tendons	18	15	
0511995011	Dressed	3	0	
0511995019	Other	3	0	
0511995020	Horsehair waste	3	0	
0511996000	Natural sponges of animal origin	8	0	
0511999010	Silkworm eggs	18	0	
0511999020	Chrysalis of silk worm	8	0	
0511999030	Dead animals, other than products of dead animals of Chapter 3	8	0	
0511999040	Paring and similar waste of rawhides or skins	8	0	
0511999090	Other	8	0	
0601101000	Of tulips	8	0	
0601102000	Of lilies	4	0	
0601103000	Of dahlias	8	0	
0601104000	Of hyacinthus	8	0	
0601105000	Of gladiolus	8	0	
0601106000	Of iris	8	0	
0601107000	Of freesias	8	0	
0601108000	Of narcissus	8	0	
0601109000	Other	8	0	
0601201000	Of tulips	8	0	
0601202000	Of lilies	8	0	
0601203000	Of dahlias	8	0	
0601204000	Of hyacinthus	8	0	
0601205000	Of gladiolus	8	0	
0601206000	Chicory plants and roots	8	0	
0601207000	Of iris	8	0	
0601208000	Of freesias	8	0	
0601209010	Of narcissus	8	0	
0601209090	Other	8	0	
0602101000	Of fruit trees	8	0	
0602109000	Other	8	10	
0602201000	Apple trees	18	5	
0602202000	Pear trees	18	5	
0602203000	Peach trees	18	5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0602204000	Grape vines	8	5	
0602205000	Persimmon trees	8	5	
0602206000	Citrus trees	18	5	
0602207010	Chestnut trees	8	10	
0602207020	Walnut trees	8	10	
0602207030	Korean pine trees	8	10	
0602209000	Other	8	10	
0602300000	Rhododendrons and azaleas, grafted or not	8	10	
0602400000	Roses, grafted or not	8	0	
0602901010	Orchids or orchises	8	10	
0602901020	Carnations	8	3	
0602901030	Guzmania empire	8	3	
0602901040	Gypsophilas	8	3	
0602901050	Chrysanthemums	8	3	
0602901060	Cactus	8	3	
0602901090	Other	8	3	
0602902011	For bonsai	8	10	
0602902019	Other	8	10	
0602902020	Larch trees	8	10	
0602902030	Cryptomeria	8	10	
0602902040	Japanese cypress	8	10	
0602902050	Rigi-taeda	8	10	
0602902061	For bonsai	8	10	
0602902069	Other	8	10	
0602902071	For bonsai	8	10	
0602902079	Other	8	10	
0602902081	For bonsai	8	10	
0602902089	Other	8	10	
0602902091	For bonsai	8	10	
0602902099	Other	8	10	
0602909010	Peony trees	8	10	
0602909020	Camellia trees	8	10	
0602909030	Mulberry trees	18	10	
0602909040	Mushroom spawn	8	5	
0602909090	Other	8	10	
0603110000	Roses	25	18	
0603120000	Carnations	25	18	
0603131000	Cymbidiums	25	10	
0603132000	Phalaenopsis	25	15	
0603139000	Other	25	15	
0603140000	Chrysanthemums	25	15	
0603191000	Tulips	25	15	
0603192000	Gladiolus	25	18	
0603193000	Lilies	25	18	
0603194000	Gypsophila	25	E	
0603199000	Other	25	18	
0603900000	Other	25	10	
0604100000	Mosses and lichens	8	10	
0604911010	Leaves of ginkgos	8	10	
0604911090	Other	8	10	
0604919000	Other	8	5	
0604990000	Other	8	5	
0701100000	For seed	304	10	
0701900000	Other	304	E/S-1 [1)]	
0702000000	Tomatoes, fresh or chilled	45	7	
0703101000	Onions	135% or 180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E	
0703102000	Shallots	27	E	
0703201000	Peeled	360% or 1,800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E	
0703209000	Other	360% or 1,800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E	
0703901000	Leeks	27	7	
0703909000	Other	27	15	
0704100000	Cauliflowers and headed broccoli	27	10	
0704200000	Brussels sprouts	27	7	
0704901000	Cabbages	27	7	
0704902000	Chinese cabbages	27	5	
0704909000	Other	27	5	
0705110000	Cabbage lettuce (head lettuce)	45	18	
0705190000	Other	45	18	
0705210000	Witloof chicory (Cichorium intybus var. foliosum)	8	3	
0705290000	Other	8	3	
0706101000	Carrots	30% or 134won/kg, whichever is the	5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greater		
0706102000	Turnips	27	10	
0706901000	Radishes	30	15	
0706902000	Wasabi and horseradishes	27	10	
0706903000	Codonopsis	27	E	
0706904000	Platycodon grandiflorum	27	E	
0706909000	Other	27	15	
0707000000	Cucumbers and gherkins, fresh or chilled	27	15	
0708100000	Peas (Pisum sativum)	27	7	
0708200000	Beans (Vigna spp., Phaseolus spp.)	27	10	
0708900000	Other leguminous vegetables	27	5	
0709200000	Asparagus	27	3	
0709300000	Aubergines (egg-plants)	27	5	
0709400000	Celery other than celeriac	27	5	
0709517000	Cultivated mushrooms (Agaricus bisporus)	30	15	
0709519000	Other	30	15	
0709591000	Pine mushrooms	30	15	
0709592000	Oak mushrooms	40% or 1,625won/ kg, whichever is the greater	E	
0709593000	Ling chiu mushrooms	30	18	
0709594010	King oyster mushrooms	30	18	
0709594090	Other	30	18	
0709595000	Winter mushrooms	30	18	
0709596000	Truffles	27	15	
0709599000	Other	30	18	
0709601000	Sweet peppers (bell type)	270% or 6,210won/ kg, whichever is the greater	E	
0709609000	Other	270% or 6,210won/ kg, whichever is the greater	E	
0709700000	Spinach, New Zealand spinach and orache spinach (garden spinach)	27	7	
0709901000	Bracken	30	15	
0709902000	Flowering ferns	27	15	
0709903000	Pumpkins	27	15	
0709909000	Other	27	15	
0710100000	Potatoes	27	15	
0710210000	Peas (Pisum sativum)	27	15	
0710220000	Beans (Vigna spp., Phaseolus spp.)	27	15	
0710290000	Other	27	15	
0710300000	Spinach, New Zealand spinach and orache spinach (garden spinach)	27	15	
0710400000	Sweet corn	30	15	
0710801000	Onions	27	15	
0710802000	Garlic	27	18	
0710803000	Bamboo shoots	27	15	
0710804000	Carrots	27	10	
0710805000	Bracken	30	15	
0710806000	Pine mushrooms	27	18	
0710807000	Fruits of the genus Capsicum or of the genus Pimenta	27	E	
0710809000	Other	27	15	
0710900000	Mixtures of vegetables	27	18	
0711200000	Olives	27	18	
0711400000	Cucumbers and gherkins	30	15	
0711510000	Mushrooms of the genus Agaricus	30	15	
0711591000	Truffles	27	15	
0711599000	Other	30	15	
0711901000	Garlic	360% or 1,800won/ kg, whichever is the greater	E	
0711903000	Bamboo shoots	27	15	
0711904000	Carrots	30	15	
0711905010	Bracken	30	15	
0711905020	Flowering ferns	27	15	
0711905091	Fruits of the genus capsicum or of the genus pimenta	270% or 6,210won/ kg, whichever is the	E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greater		
0711905099	Other	27	15	
0711909000	Mixtures of vegetables	27	7	
0712200000	Onions	135% or 180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E	
0712311000	Cultivated mushrooms (Agaricus bisporus)	30	18	
0712319000	Other	30% or 1,218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18	
0712320000	Wood ears (Auricularia spp.)	30% or 1,218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15	
0712330000	Jelly fungi (Tremella spp.)	30% or 1,218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18	
0712391010	Pine mushrooms	30	15	
0712391020	Oak mushrooms	40% or 1,625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E	
0712391030	Ling chiu mushrooms	30% or 842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18	
0712391040	Oyster mushrooms	30	18	
0712391050	Winter mushrooms	30	18	
0712391090	Other	30% or 1,218won/kg, whichever is the	18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greater		
0712392000	Truffles	27	15	
0712901000	Garlic	360% or 1,800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E	
0712902010	Bracken	30% or 1,807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15	
0712902020	Radishes	30	15	
0712902030	Welsh onions	30% or 1,159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E	
0712902040	Carrots	30% or 864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18	
0712902050	Pumpkins	30	15	
0712902060	Cabbages	30	15	
0712902070	Taro stems	30	15	
0712902080	Sweet potato stems	30	15	
0712902091	Sweet corn for seeds	370	15	
0712902092	Sweet corn, excluding those for seeds	370	15	
0712902093	Potatoes	27	7	
0712902094	Flowering ferns	30% or 1,446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15	
0712902095	Codonopsis	30	E	
0712902099	Other	30	15	
0712909000	Mixtures of vegetables	27	7	
0713101000	For seed	27	5	
0713102000	For feeding	0	0	
0713109000	Other	27	1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0713200000	Chickpeas (garbanzos)	27	10	
0713311000	For seed	607.5	5	
0713319000	Other	607.5	B	
0713321000	For seed	420.8	15	
0713329000	Other	420.8	15	
0713331000	For seed	27	5	
0713339000	Other	27	10	
0713390000	Other	27	7	
0713400000	Lentils	27	10	
0713500000	Broad beans (Vicia faba var. major) and horse beans (Vicia faba var. equina, Vicia faba var. minor)	27	5	
0713900000	Other	27	5	
0714101000	Fresh	887.4	10	
0714102010	Chips	887.4	15	
0714102020	Pellets	887.4	15	
0714102090	Other	887.4	15	
0714103000	Chilled	887.4	15	
0714104000	Frozen	45	15	
0714201000	Fresh	385% or 338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18	
0714202000	Dried	385	15	
0714203000	Chilled	385	15	
0714204000	Frozen	45	15	
0714209000	Other	385	18	
0714901010	Frozen	45	18	
0714901090	Other	18	15	
0714909010	Frozen	45	10	
0714909090	Other	385	E	
0801110000	Desiccated	30	15	
0801190000	Other	30	15	
0801210000	In shell	30	15	
0801220000	Shelled	30	15	
0801310000	In shell	8	15	
0801320000	Shelled	8	15	
0802110000	In shell	8	10	
0802120000	Shelled	8	0	
0802210000	In shell	8	10	
0802220000	Shelled	8	10	
0802310000	In shell	45	E	
0802320000	Shelled	30	E	
0802401000	In shell	219.4% or 1,470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E	
0802402000	Shelled	219.4% or 1,470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E	
0802500000	Pistachios	30	18	
0802600000	Macadamia nuts	30	5	
0802901010	In shell	566.8% or 2,664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15	
0802901020	Shelled	566.8% or 2,664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15	
0802902010	In shell	27.0% or 803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10	
0802902020	Shelled	27.0% or 803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10	
0802909000	Other	30	7	
0803000000	Bananas, including plantains, fresh or dried	30	15	
0804100000	Dates	30	15	
0804200000	Figs	30	15	
0804300000	Pineapples	30	15	
0804400000	Avocados	30	15	
0804501000	Guavas	30	10	
0804502000	Mangoes	30	10	
0804503000	Mangosteens	30	15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0805100000	Oranges	50	See paragraph 8 Appendix 2A-1 of the schedule of Korea	
0805201000	Korean citrus	144	E	
0805209000	Other	144	S-3	
0805400000	Grapefruit, including pomelos	30	15	
0805501000	Lemons (Citrus limon, Citrus limonum)	30	18	
0805502010	Citrus aurantifolia	30	15	
0805502020	Citrus latifolia	144	15	
0805900000	Other	144	E	
0806100000	Fresh	45	S-4	
0806200000	Dried	21	0	
0807110000	Watermelons	45	E	
0807190000	Other	45	18	
0807200000	Papaws (papayas)	30	15	
0808100000	Apples	45	E	
0808201000	Pears	45	E	
0808202000	Quinces	45	18	
0809100000	Apricots	45	7	
0809200000	Cherries	24	0	
0809300000	Peaches, including nectarines	45	10	
0809401000	Plums	45	10	
0809402000	Sloes	45	15	
0810100000	Strawberries	45	E	
0810200000	Raspberries, blackberries, mulberries and loganberries	45	15	
0810400000	Cranberries, bilberries and other fruits of the genus Vaccinium	45	E	
0810500000	Kiwifruit	45	S-5	
0810600000	Durians	45	15	
0810901000	Persimmons	50	E	
0810902000	Sweet persimmons	45	E	
0810903000	Jujubes	611.5% or 5,800won/ kg, whichever is the greater	E	
0810905000	Mumes	50	E	
0810909000	Other	45	E	
0811100000	Strawberries	30	E	
0811200000	Raspberries, blackberries, mulberries, loganberries, black, white or red currants and gooseberries	30	15	
0811901000	Chestnuts	30	18	
0811902000	Jujubes	30	15	
0811903000	Pine-nuts	30	15	
0811909000	Other	30	7	
0812100000	Cherries	30	15	
0812901000	Strawberries	30	15	
0812909000	Other	30	15	
0813100000	Apricots	45	18	
0813200000	Prunes	18	18	
0813300000	Apples	45	E	
0813401000	Persimmons	50	E	
0813402000	Jujubes	611.5% or 5,800won/ kg, whichever is the greater	E	
0813409000	Other	45	18	
0813500000	Mixtures of nuts or dried fruits of this Chapter	45	E	
0814001000	Peel of citrus fruit	30	15	
0814002000	Peel of melons (including watermelons)	30	15	
0901110000	Not decaffeinated	2	0	
0901120000	Decaffeinated	2	0	
0901210000	Not decaffeinated	8	7	
0901220000	Decaffeinated	8	7	
0901901000	Coffee husks and skins	3	3	
0901902000	Coffee substitutes containing coffee	8	7	
0902100000	Green tea (not fermented) in immediate packings of a content not exceeding 3 kg	513.6	E	
0902200000	Other green tea (not fermented)	513.6	E	
0902300000	Black tea (fermented) and partly fermented tea, in immediate packings of a content not exceeding 3 kg	40	18	
0902400000	Other black tea (fermented) and other partly fermented tea	40	18	
0903000000	Maté	25	7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0904110000	Neither crushed nor ground	8	10	
0904120000	Crushed or ground	8	10	
0904201000	Neither crushed nor ground	270% or 6,210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E	
0904202000	Crushed or ground	270% or 6,210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E	
0905000000	Vanilla	8	15	
0906110000	Cinnamon(Cinnamomum zeylanicum Blume)	8	10	
0906191000	Cinnamon, other than Cinnamomum zeylanicum Blume	8	10	
0906192000	Cinnamon tree flowers	8	10	
0906201000	Cinnamon	8	10	
0906202000	Cinnamon tree flowers	8	10	
0907000000	Cloves (whole fruit, cloves and stems)	8	10	
0908100000	Nutmeg	8	10	
0908200000	Mace	8	7	
0908300000	Cardamoms	8	3	
0909100000	Seeds of anise or badian	8	7	
0909200000	Seeds of coriander	8	15	
0909300000	Seeds of cumin	8	15	
0909400000	Seeds of caraway	8	7	
0909500000	Seeds of fennel; juniper berries	8	7	
0910101000	Fresh or chilled	377.3% or 931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E	
0910102000	Dried	377.3% or 931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E	
0910109000	Other	377.3% or 931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E	
0910200000	Saffron	8	10	
0910300000	Turmeric (curcuma)	8	7	
0910910000	Mixtures referred to in Note 1 (b) to this chapter	8	5	
0910991000	Thyme; bay leaves	8	5	
0910992000	Curry	8	5	
0910999000	Other	8	5	
1001100000	Durum wheat	3	0	
1001901000	Meslin	3	0	
1001909010	For seed	1.8	3	
1001909020	For feeding	0	0	
1001909030	For milling	1.8	0	
1001909090	Other	1.8	0	
1002001000	For seed	108.7	15	
1002009000	Other	3	0	
1003001000	Malting barley	513	See paragraph 9 Appendix 2A-1 of the schedule of Korea	See Annex 6-A
1003009010	Unhulled barley	324% or 326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E	
1003009020	Naked barley	299.7% or 361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E	
1003009090	Other	299.7	E	
1004001000	For seed	554.8	5	
1004009000	Other	3	0	
1005100000	For seed	328	18	
1005901000	For feeding	328	18	
1005902000	Popcorn	630	18	
1005909000	Other	328	7	See Annex 6-A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1006100000	Rice in the husk (paddy or rough)	-	R	
1006201000	Nonglutinous	-	R	
1006202000	Glutinous	-	R	
1006301000	Nonglutinous	-	R	
1006302000	Glutinous	-	R	
1006400000	Broken rice	-	R	
1007001000	For seed	779.4	E	
1007009000	Other	3	3	
1008100000	Buckwheat	256.1	E	
1008201010	For seed	18	10	
1008201090	Other	3	10	
1008209000	Other	3	5	
1008300000	Canary seeds	3	0	
1008900000	Other cereals	800.3	E	
1101001000	Of wheat	4.2	5	
1101002000	Of meslin	5	0	
1102100000	Rye flour	5	5	
1102200000	Maize (corn) flour	5	5	
1102901000	Barley flour	260	E	
1102902000	Rice flour	-	R	
1102909000	Other	800.3	E	
1103110000	Of wheat	288.2	E	
1103130000	Of maize (corn)	162.9	E	
1103191000	Of barley	260	E	
1103192000	Of oats	554.8	E	
1103193000	Of rice	-	R	
1103199000	Other	800.3	15	
1103201000	Of wheat	288.2	15	
1103202000	Of rice	-	R	
1103203000	Of barley	260	15	
1103209000	Other	800.3	E	
1104120000	Of oats	554.8	E	
1104191000	Of rice	-	R	
1104192000	Of barley	233	E	
1104199000	Other	800.3	E	
1104220000	Of oats	554.8	E	
1104230000	Of maize (corn)	167	10	
1104291000	Of coicis semen	800.3	E	
1104292000	Of barley	126	E	
1104299000	Other	800.3	E	
1104301000	Of rice	5	E	
1104309000	Other	5	7	
1105100000	Flour, meal and powder	304	E	
1105200000	Flakes, granules and pellets	304	E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1106100000	Of the dried leguminous vegetables of heading 07.13	8	7	
1106201000	Of arrow roots	8	10	
1106209000	Other	8	10	
1106300000	Of the products of Chapter 8	8	7	
1107100000	Not roasted	269	See paragraph 9 Appendix 2A-1 of the schedule of Korea	See Annex 6-A
1107201000	Smoked	269	B	
1107209000	Other	27	15	
1108110000	Wheat starch	50.9	10	
1108121000	For food	226	B	
1108129000	Other	226	B	
1108130000	Potato starch	455	B	
1108141000	For food	455	18	
1108149000	Other	455	B	
1108191000	Of sweet potato	241.2	B	
1108199000	Other	800.3	B	
1108200000	Inulin	800.3	B	
1109000000	Wheat gluten, whether or not dried	8	0	
1201001010	For soya bean oil and oil cake	487% or 956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B	
1201001020	For feeding	487% or 956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B	
1201009010	For bean sprouts	487% or 956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See paragraph 10 Appendix 2A-1 of the schedule of Korea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1201009090	Other	487% or 956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See paragraph 10 Appendix 2A-1 of the schedule of Korea	
1202100000	In shell	230.5	E	
1202200000	Shelled, whether or not broken	230.5	E	
1203000000	Copra	3	0	
1204000000	Linseed, whether or not broken	3	0	
1205101000	Seeds for fodder planting	0	0	
1205109000	Other	10	0	
1205901000	Seeds for fodder planting	0	0	
1205909000	Other	10	5	
1206000000	Sunflower seeds, whether or not broken	25	18	
1207200000	Cotton seeds	3	0	
1207400000	Sesamum seeds	630% or 6,660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E	
1207500000	Mustard seeds	3	0	
1207910000	Poppy seeds	3	0	
1207991000	Perilla seeds	40% or 410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15	
1207992000	Shea nuts (Karite nuts)	3	0	
1207993000	Palm nuts and kernels	3	0	
1207994000	Castor oil seeds	3	0	
1207995000	Safflower seeds	3	0	
1207999000	Other	3	0	
1208100000	Of soya beans	3	5	
1208900000	Other	3	0	
1209100000	Sugar beet seeds	0	0	
1209210000	Lucerne(alfalfa) seeds	0	0	
1209220000	Clover(Trifolium spp.) seeds	0	0	
1209230000	Fescue seeds	0	0	
1209240000	Kentucky blue grass(Poa pratensis L.) seeds	0	0	
1209250000	Rye grass(Lolium multiflorum Lam., Lolium perenne L.) seeds	0	0	
1209291000	Lupine seed	0	0	
1209292000	Sudan grass seed	0	0	
1209293000	Orchard grass seeds	0	0	
1209294000	Timothy grass seed	0	0	
1209299000	Other	0	0	
1209300000	Seeds of herbaceous plants cultivated principally for their flowers	0	0	
1209911010	Onion seeds	0	0	
1209911090	Other	0	0	
1209912000	Radish seeds	0	0	
1209919000	Other	0	0	
1209991010	Seeds of oak	0	0	
1209991090	Other	0	0	
1209992000	Seeds of fruit trees	0	0	
1209993000	Tobacco seed	0	0	
1209994000	Lawn seed	0	0	
1209999000	Other	0	0	
1210100000	Hop cones, neither ground nor powdered nor in the form of pellets	30	15	
1210201000	Hop cones	30	18	
1210202000	Lupulin	30	15	
1211201100	Raw ginseng	222.8	E	
1211201210	Major roots	222.8	E	
1211201290	Other	222.8	E	
1211201310	Major root	754.3	E	
1211201390	Other	754.3	E	
1211202110	Powder	18	E	
1211202120	Tablet or capsule	18	E	
1211202190	Other	18	E	
1211202210	Powder	754.3	E	
1211202220	Tablet or capsule	754.3	E	
1211202290	Other	754.3	E	
1211209100	Leaves and stems of ginseng	754.3	E	
1211209200	Ginseng seed	754.3	E	
1211209900	Other	754.3	E	
1211300000	Coca leaf	8	5	
1211400000	Poppy straw	8	5	
1211901000	Aconiti tuber	8	7	
1211902000	Coptidis rhizoma	8	10	
1211903000	Polygalae radix	8	5	
1211904000	Fritillariae roylei bulbus	8	5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1211905000	Eucommiae cortex	8	5	
1211906000	Liquorice roots	8	10	
1211909010	Amomi semen	8	5	
1211909020	Zizyphi semen	8	10	
1211909030	Quisqualis fructus	8	7	
1211909040	Longanae arillus	8	10	
1211909050	Crataegi fructus	8	7	
1211909060	Nelumbo semen	8	7	
1211909070	Pepper mint	8	7	
1211909080	Japanese pepper	8	10	
1211909091	Dried platycodon grandiflorum	8	E	
1211909099	Other	8	15	
1212201010	Dried	20	3	
1212201020	Chilled	20	3	
1212201030	Frozen	10	3	
1212201090	Other	20	0	
1212202010	Dried	20	5	
1212202020	Salted	20	3	
1212202030	Chilled	20	3	
1212202040	Frozen	45	3	
1212202090	Other	20	3	
1212203010	Dried	20	3	
1212203020	Chilled	20	3	
1212203030	Frozen	45	3	
1212203090	Other	20	3	
1212204010	Fresh	20	3	
1212204020	Chilled	20	3	
1212204030	Frozen	45	3	
1212204090	Other	20	3	
1212205010	Salted	20	0	
1212205020	Chilled	20	0	
1212205030	Frozen	45	5	
1212205090	Other	20	3	
1212206010	Frozen	45	3	
1212206090	Other	20	3	
1212207011	Frozen	45	3	
1212207019	Other	20	3	
1212207021	Frozen	45	3	
1212207029	Other	20	3	
1212207031	Frozen	45	3	
1212207039	Other	20	3	
1212208011	Frozen	45	3	
1212208019	Other	20	3	
1212208021	Frozen	45	3	
1212208029	Other	20	3	
1212208031	Frozen	45	3	
1212208039	Other	20	3	
1212209011	Frozen	45	3	
1212209019	Other	20	3	
1212209091	Frozen	45	3	
1212209099	Other	20	3	
1212910000	Sugar beet	3	0	
1212991000	Unroasted chicory roots of the variety cichorium intybus sativum	8	5	
1212992000	Tuber of kuyaku	8	15	
1212993000	Pollen	8	15	
1212994000	Sugar cane	3	0	
1212995000	Locust beans, including locust bean seeds	20	15	
1212996000	Apricot, peach (including nectarine) or plum stones and kernels	8	7	
1212999000	Other	8	7	
1213000000	Cereal straw and husks, unprepared, whether or not chopped, ground, pressed or in the form of pellets	8	5	
1214101000	For feeding	1	0	
1214109000	Other	10	15	
1214901000	Fodder roots	100.5	B	
1214909011	For feeding	1	0	
1214909019	Other	18	15	
1214909090	Other	100.5	See paragraph 11 Appendix 2A-1 of the schedule of Korea	
1301200000	Gum Arabic	3	0	
1301901000	Oleoresins	3	5	
1301902010	Shellac	3	0	
1301902090	Other	3	0	
1301909000	Other	3	5	
1302110000	Opium	8	5	
1302120000	Of liquorice	8	10	
1302130000	Of hops	30	18	
1302191110	White ginseng extract	20	15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1302191120	White ginseng extract powder	20	15	
1302191190	Other	20	15	
1302191210	Red ginseng extract	754.3	E	
1302191220	Red ginseng extract powder	754.3	E	
1302191290	Other	754.3	E	
1302191900	Other	20	E	
1302192000	Cashew nut shell liquid	8	5	
1302193000	Natural lacquer	8	10	
1302199010	Saps and extracts of aloes	8	10	
1302199020	Cola extract	8	3	
1302199091	Vanilla oleoresin or vanilla extract	8	7	
1302199099	Other	8	E	
1302200000	Pectic substances, pectinates and pectates	8	15	
1302311000	Agar-agar in stripe form	8	3	
1302312000	Agar-agar, powdered	8	0	
1302319000	Other	8	0	
1302320000	Mucilages and thickeners, whether or not modified, derived from locust beans, locust bean seeds or guar seeds	8	15	
1302390000	Other	8	15	
1401101000	Bamboos, phyllostachys	8	10	
1401102000	Raw bamboos	8	10	
1401109000	Other	8	10	
1401201000	Split or drawn	8	10	
1401209000	Other	8	10	
1401901000	Bark of arrow root's stems	8	10	
1401909000	Other	8	10	
1404200000	Cotton linters	3	0	
1404901000	Hard seeds, pips, hulls and nuts, of a kind used for carving (for example, corozo)	3	5	
1404902010	Bark of paper mulberry	3	5	
1404902020	Bark of edgeworthia papyrifera	3	5	
1404902090	Other	3	7	
1404903010	Leaves of quercus dentata	5	10	
1404903020	Leaves of smilax china	5	10	
1404903090	Other	5	10	
1404904000	Vegetable materials of a kind used primarily as stuffing or as padding (for example, kapok, vegetable hair and eel-grass), whether or not put up as a layer with or without supporting material	3	5	
1404905000	Vegetable materials of a kind used primarily in brooms or in brushes(for example, broomcorn, piassava, couch-grass and istle), whether or not in hanks or bundles	3	0	
1404906010	Gall nuts	3	5	
1404906020	Almond hulls	3	5	
1404906090	Other	3	5	
1404909000	Other	3	5	
1501001010	Of an acid value not exceeding 1	3	0	
1501001090	Other	3	0	
1501002000	Poultry fat	3	0	
1502001010	Of an acid value not exceeding 2	2	3	
1502001090	Other	2	10	
1502009000	Other	3	3	
1503002000	Lard-oil	3	3	
1503009000	Other	3	3	
1504101000	Sharks' liver oil and its fractions	3	0	
1504109000	Other	3	0	
1504200000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of fish, other than liver oils	3	5	
1504301000	Whale oil and its fractions	3	0	
1504309000	Other	3	0	
1505001000	Wool grease, crude	3	3	
1505009000	Other	3	3	
1506001000	Neat's foot oil and its fractions	3	3	
1506009000	Other	3	3	
1507101000	For food	5.4	10	
1507102000	For manufacturing biodiesel	5.4	10	
1507109000	Other	5.4	10	
1507901010	For food	5.4	10	
1507901020	For manufacturing biodiesel	5.4	10	
1507901090	Other	5.4	7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1507909000	Other	8	7	
1508100000	Crude oil	27	15	
1508901000	Refined oil	27	15	
1508909000	Other	27	15	
1509100000	Virgin	8	10	
1509900000	Other	8	10	
1510000000	Other oils and their fractions, obtained solely from olive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including blends of these oils or fractions with oils or fractions of heading 15.09	8	10	
1511100000	Crude oil	3	3	
1511901000	Palm olein	2	3	
1511902000	Palm stearin	2	3	
1511909000	Other	2	3	
1512111000	Sunflower-seed oil	10	7	
1512112000	Safflower oil	8	5	
1512191010	Sunflower-seed oil	10	10	
1512191020	Safflower oil	8	5	
1512199010	Sunflower-seed oil	10	7	
1512199020	Safflower oil	8	5	
1512210000	Crude oil, whether or not gossypol has been removed	5.4	5	
1512291000	Refined oil	5.4	7	
1512299000	Other	8	5	
1513110000	Crude oil	3	3	
1513191000	Refined oil	3	3	
1513199000	Other	3	3	
1513211000	Palm kernel oil	5	3	
1513212000	Babassu oil	8	3	
1513291010	Palm kernel oil	5	5	
1513291020	Babassu oil	8	3	
1513299000	Other	8	3	
1514110000	Crude oil	8	10	
1514191000	Refined oil	10	5	
1514199000	Other	10	5	
1514911000	Other Rape oil or colza oil	8	15	
1514912000	Mustard oil	30	15	
1514991010	Other Rape oil or colza oil	10	15	
1514991020	Mustard oil	30	15	
1514999000	Other	10	15	
1515110000	Crude oil	8	7	
1515190000	Other	8	10	
1515210000	Crude oil	8	10	
1515290000	Other	8	10	
1515300000	Castor oil and its fractions	8	10	
1515500000	Sesame oil and its fractions	630% or 12,060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E	
1515901000	Perilla oil and its fractions	36	18	
1515909010	Rice bran oil and its fractions	8	15	
1515909020	Camellia oil and its fractions	8	10	
1515909030	Jojoba oil and its fractions	8	10	
1515909040	Tung oil and its fractions	8	10	
1515909090	Other	8	10	
1516101000	Beef tallow and its fractions	8	5	
1516102000	Whale oil and its fractions	8	0	
1516109000	Other	8	10	
1516201010	Peanut oil and its fraction	36	15	
1516201020	Sunflower seed oil and its fraction	36	18	
1516201030	Rape or colza oil and its fraction	36	18	
1516201040	Perilla oil and its fraction	36	15	
1516201050	Sesame oil and its fraction	36	15	
1516202010	Coconut (copra) oil and its fraction	8	7	
1516202020	Palm oil and its fraction	8	7	
1516202030	Maize oil and its fraction	8	7	
1516202040	Cotton seed oil and its fraction	8	7	
1516202050	Soya-bean oil and its fraction	8	7	
1516202090	Other	8	10	
1517100000	Margarine, excluding liquid margarine	8	10	
1517901000	Imitation lard	8	7	
1517902000	Shortening	8	7	
1517909000	Other	8	10	
1518001000	Dehydrated castor oil	8	7	
1518002000	Epoxidised soya-bean oil	8	7	
1518009000	Other	8	10	
1520000000	Glycerol, crude; glycerol waters and glycerol lyes	8	7	
1521101000	Carnauba wax	8	7	
1521102000	Palm wax	8	7	
1521109000	Other	8	7	
1521901000	Spermaceti	8	3	
1521902000	Beeswax	8	1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1521909000	Other	8	7	
1522001010	Natural	8	7	
1522001090	Other	8	7	
1522009000	Other	8	7	
1601001000	Sausages	18	5	
1601009000	Other	30	5	
1602100000	Homogenised preparations	30	15	
1602201000	In airtight containers	30	10	
1602209000	Other	30	10	
1602311000	In airtight containers	30	10	
1602319000	Other	30	7	
1602321010	Samge-tang㉾	30	10	
1602321090	Other	30	E	
1602329000	Other	30	10	
1602391000	In airtight containers	30	10	
1602399000	Other	30	15	
1602411000	In airtight containers	30	5	
1602419000	Other	27	5	
1602421000	In airtight containers	30	5	
1602429000	Other	27	5	
1602491000	In airtight containers	30	E	
1602499000	Other	27	E	
1602501000	In airtight containers	72	15	
1602509000	Other	72	15	
1602901000	In airtight containers	30	15	
1602909000	Other	30	15	
1603001000	Meat extracts	30	E	
1603002000	Meat juices	30	15	
1603003000	Fish extracts	30	3	
1603004000	Fish juices	30	3	
1603009000	Other	30	3	
1604111000	In airtight containers	20	7	
1604119000	Other	20	7	
1604121000	In airtight containers	20	0	
1604129000	Other	20	0	
1604131000	In airtight containers	20	3	
1604139000	Other	20	0	
1604141011	In oil	20	7	
1604141012	Boiled	20	7	
1604141019	Other	20	7	
1604141021	In oil	20	7	
1604141022	Boiled	20	7	
1604141029	Other	20	7	
1604141031	In oil	20	7	
1604141032	Boiled	20	7	
1604141039	Other	20	7	
1604149000	Other	20	7	
1604151000	In airtight containers	20	5	
1604159000	Other	20	5	
1604161000	In airtight containers	20	3	
1604169000	Other	20	3	
1604191010	Saury	20	10	
1604191020	Horse mackerel	20	5	
1604191030	Eels (anguilla spp.)	20	5	
1604191090	Other	20	3	
1604199010	Jerk filefish	20	5	
1604199090	Other	20	3	
1604201000	Fish pastes	20	3	
1604202000	Fish marinade	20	3	
1604203000	Fish sausages	20	3	
1604204010	Of crab flavor	20	3	
1604204090	Other	20	3	
1604209000	Other	20	0	
1604301000	Caviar	20	0	
1604302000	Caviar substitutes	20	0	
1605101010	In airtight containers	20	5	
1605101020	Smoked, excluding in airtight containers	20	3	
1605101091	Red snow crab meat	20	7	
1605101099	Other	20	7	
1605109000	Other	20	3	
1605201000	In airtight containers	20	5	
1605209010	Smoked	20	3	
1605209020	Breaded	20	5	
1605209090	Other	20	7	
1605301000	In airtight containers	20	7	
1605309000	Other	20	3	
1605401000	In airtight containers	20	7	
1605409000	Other	20	7	
1605901010	Oysters	20	3	
1605901020	Mussels	20	3	
1605901030	Baby clam	20	0	
1605901040	Cockles	20	0	
1605901070	Bay top shell	20	10	
1605901080	Squid	20	3	
1605901091	Abalone	20	7	
1605901092	Top shell	20	5	
1605901099	Other	20	3	
1605902010	Squid	20	5	
1605902020	Bai top shell	20	7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1605902030	Cockles	20	0	
1605902090	Other	20	3	
1605909010	Seasoned squid	20	7	
1605909020	Sea-cucumbers	20	0	
1605909030	Bai top shell	20	7	
1605909040	Mussel	20	3	
1605909090	Other	20	7	
1701111000	Of a polarization not exceeding 98.5°	3	0	
1701112000	Of a polarization exceeding 98.5°	3	0	
1701121000	Of a polarization not exceeding 98.5°	3	0	
1701122000	Of a polarization exceeding 98.5°	3	0	
1701910000	Containing added flavouring or colouring matter	35	E	
1701990000	Other	35	18	See Annex 6-A
1702111000	Lactose	49.5	10	
1702119000	Lactose syrup	20	15	
1702191000	Lactose	49.5	E	
1702199000	Lactose Syrup	20	E	
1702201000	Maple sugar	8	7	
1702202000	Maple syrup	8	7	
1702301000	Glucose	8	15	
1702302000	Glucose syrup	8	15	
1702401000	Glucose	8	15	
1702402000	Glucose syrup	8	15	
1702500000	Chemically pure fructose	8	15	
1702601000	Fructose	8	15	
1702602000	Fructose syrup	8	15	
1702901000	Artificial honey	243	E	
1702902000	Caramel	8	10	
1702903000	Maltose	8	10	
1702909000	Other	8	15	
1703101000	For use in manufacturing spirits	3	10	
1703109000	Other	3	5	
1703901000	For use in manufacturing spirits	3	0	
1703909000	Other	3	3	
1704100000	Chewing gum, whether or not sugar-coated	8	15	
1704901000	Liquorice extract, not put up as confectionery	8	15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1704902010	Drops	8	10	
1704902020	Caramels	8	10	
1704902090	Other	8	15	
1704909000	Other	8	7	
1801001000	Raw	2	0	
1801002000	Roasted	8	0	
1802001000	Cocoa shells, husks and skins	8	0	
1802009000	Other	8	5	
1803100000	Not defatted	5	10	
1803200000	Wholly or partly defatted	5	3	
1804000000	Cocoa butter, fat and oil	5	3	
1805000000	Cocoa powde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5	10	
1806100000	Cocoa powde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8	15	
1806201000	Chocolate and chocolate confectionery	8	5	
1806209010	Cocoa preparation containing 50 % or more by weight of milk powder	8	5	
1806209090	Other	8	5	
1806311000	Chocolate and chocolate confectionery	8	5	
1806319000	Other	8	5	
1806321000	Chocolate and chocolate confectionery	8	5	
1806329000	Other	8	5	
1806901000	Chocolate and chocolate confectionery	8	5	
1806902111	Of prepared dry-milk	36	17	
1806902119	Other	40	17	
1806902191	Of oatmeal	8	3	
1806902199	Other	8	3	
1806902210	Of barley flour	8	5	
1806902290	Other	-	R	
1806902910	Of malt extract	30	5	
1806902920	Of 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s 04.01 to 04.04	36	10	
1806902991	Of oatmeal	8	3	
1806902992	Of barley flour	8	5	
1806902999	Other	-	R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1806903010	Of prepared foods obtained by the swelling or roasting of cereals or cereal product	5.4	5	
1806903091	Rice in grain form	8	E	
1806903099	Other	8	5	
1806909010	Cocoa preparation containing 50 % or more by weight of milk powder	8	5	
1806909090	Other	8	5	
1901101010	Prepared dry milk	36	See paragraph 12 Appendix 2A-1 of the schedule of Korea	
1901101090	Other	40	See paragraph 12 Appendix 2A-1 of the schedule of Korea	
1901109010	Of oatmeal	8	5	
1901109090	Other	8	7	
1901201000	Of rice flour	-	R	
1901202000	Of barley flour	8	5	
1901209000	Other	-	R	
1901901000	Malt extract	30	E	
1901902010	Of a fat content, by weight, not exceeding 30 %	36	15	
1901902020	Of a fat content, by weight, exceeding 30 %	36	15	
1901909010	Oat meal	8	5	
1901909091	Of rice flour	-	R	
1901909092	Of barley flour	8	5	
1901909099	Other	-	R	
1902111000	Spaghetti	8	15	
1902112000	Macaroni	8	7	
1902119000	Other	8	7	
1902191000	Noodles	8	15	
1902192000	Chinese vermicelli	32% or 253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15	
1902193000	Naeng-myun㉾	8	5	
1902199000	Other	8	10	
1902200000	Stuffed pasta, whether or not cooked or otherwise prepared	8	10	
1902301010	Ramen㉾	8	0	
1902301090	Other	8	0	
1902309000	Other	8	10	
1902400000	Couscous	8	10	
1903001000	Tapioca	8	10	
1903009000	Other	8	10	
1904101000	Corn flakes	5.4	7	
1904102000	Corn chip	5.4	7	
1904103000	Puffed rice	5.4	3	
1904109000	Other	5.4	5	
1904201000	Of Musli type preparations	45	18	
1904209000	Other	5.4	5	
1904300000	Bulgur wheat	8	3	
1904901010	Steamed or boiled rice	50	E	
1904901090	Other	8	E	
1904909000	Other	8	5	
1905100000	Crispbread	8	10	
1905200000	Gingerbread and the like	8	10	
1905310000	Sweet biscuits	8	15	
1905320000	Waffles and wafers	8	15	
1905400000	Rusks, toasted bread and similar toasted products	8	15	
1905901010	Bread	8	15	
1905901020	Ship's biscuits	8	15	
1905901030	Pastries and cakes	8	15	
1905901040	Biscuits, cookies and crackers	8	15	
1905901050	Bakers' wares of rice	8	15	
1905901090	Other	8	15	
1905909010	Empty cachets of a kind suitable for pharmaceutical use	8	7	
1905909020	Rice paper	8	7	
1905909090	Other	8	7	
2001100000	Cucumbers and gherkins	30	15	
2001901000	Fruit and nuts	30	15	
2001909010	Shallots	30	15	
2001909020	Tomatoes	30	15	
2001909030	Cauliflower	30	15	
2001909040	Sweet corn	30	15	
2001909050	Rakkyo	30	15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2001909060	Garlic	30	15	
2001909070	Onions	30	15	
2001909090	Other	30	15	
2002100000	Tomatoes, whole or in pieces	8	15	
2002901000	Tomato paste (of a soluble solid, of 24 % or more)	5	10	
2002909000	Other	8	10	
2003104000	Cultivated mushrooms (Agaricus bisporus)	20	15	
2003109000	Other	20	15	
2003200000	Truffles	20	15	
2003901000	Oak Mushrooms	20	E	
2003902000	Pine Mushrooms	20	15	
2003909000	Other	20	15	
2004100000	Potatoes	18	3	
2004901000	Sweet corn	30	15	
2004909000	Other	30	E	
2005101000	Pureed corn for infant	20	10	
2005109000	Other	20	10	
2005201000	Croquettes prepared from flakes	20	15	
2005209000	Other	20	15	
2005400000	Peas (Pisum sativum)	20	15	
2005511000	Of small green beans	20	15	
2005512000	Of small red beans	20	15	
2005519000	Other	20	15	
2005591000	Of small green beans	20	15	
2005592000	Of small red beans	20	15	
2005599000	Other	20	15	
2005600000	Asparagus	20	15	
2005700000	Olives	20	15	
2005800000	Sweet corn (Zea mays var. saccharata)	15	15	
2005910000	Bamboo shoots	20	15	
2005991000	Kim-chi㉾	20	15	
2005992000	Sauerkraut	20	15	
2005999000	Other	20	15	
2006001000	Marrons glacés	30	E	
2006002000	Pineapples	30	15	
2006003000	Ginger	30	15	
2006004000	Lotus roots	30	10	
2006005000	Peas (Pisum sativum)	20	10	
2006006010	Beans shelled	20	10	
2006006090	Other	20	10	
2006007000	Asparagus	20	7	
2006008000	Olive	20	7	
2006009010	Sweet corn (Zeamays var. Sac charata)	15	7	
2006009020	Bamboo shoots	20	15	
2006009030	Of other vegetable	20	7	
2006009090	Other	30	15	
2007100000	Homogenised preparations	30	15	
2007911000	Jams, fruit jellies and marmalades	30	15	
2007919000	Other	30	15	
2007991000	Jams, fruit jellies and marmalades	30	18	
2007999000	Other	30	15	
2008111000	Peanut butter	50	10	
2008119000	Other	63.9	10	
2008191000	Chestnuts	50	18	
2008192000	Coconut	45	5	
2008199000	Other	45	10	
2008200000	Pineapples	45	10	
2008301000	Citrus junos	45	5	
2008309000	Other	45	10	
2008400000	Pears	45	10	
2008500000	Apricots	45	5	
2008600000	Cherries	45	10	
2008701000	In airtight containers, added sugar	50	10	
2008709000	Other	45	5	
2008800000	Strawberries	45	7	
2008910000	Palm hearts	45	10	
2008921010	In airtight containers, added sugar	50	10	
2008921090	Other	45	5	
2008922000	Fruit salad	45	5	
2008929000	Other	45	5	
2008991000	Grapes	45	7	
2008992000	Apples	45	7	
2008993000	Popcorn	45	7	
2008994000	Salted Japanese pepper	45	10	
2008999000	Other	45	10	
2009110000	Frozen	54	5	
2009120000	Not frozen, of a Brix value not exceeding 20	54	5	
2009190000	Other	54	5	
2009210000	Of a Brix value not exceeding 20	30	7	
2009290000	Other	30	10	
2009311000	Lemon juice	50	5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2009312000	Lime juice	50	5	
2009319000	Other	54	10	
2009391000	Lemon juice	50	10	
2009392000	Lime juice	50	5	
2009399000	Other	54	10	
2009410000	Of a Brix value not exceeding 20	50	5	
2009490000	Other	50	10	
2009500000	Tomato juice	30	5	
2009610000	Of a Brix value not exceeding 30	45	5	
2009690000	Other	45	5	
2009710000	Of a Brix value not exceeding 20	45	10	
2009790000	Other	45	7	
2009801010	Peach juice	50	10	
2009801020	Strawberry juice	50	10	
2009801090	Other	50	10	
2009802000	Juice of vegetable	30	10	
2009901010	Chiefly on the basic of orange juice	50	10	
2009901020	Chiefly on the basic of apple juice	50	10	
2009901030	Chiefly on the basic of grape juice	50	10	
2009901090	Other	50	10	
2009902000	Of vegetables	30	7	
2009909000	Other	50	10	
2101111000	Instant coffee	8	5	
2101119000	Other	8	5	
2101121000	Preparations of instant coffee	8	5	
2101129010	Of containing milk, cream or their substitutes	8	5	
2101129090	Other	8	5	
2101201000	Of containing sugar, lemon or their substitutes	40	15	
2101209011	Of packing with tea bag	40	15	
2101209019	Other	40	15	
2101209090	Other	40	15	
2101301000	Of barley	8	3	
2101309000	Other	8	3	
2102101000	Brewery yeast	8	5	
2102102000	Distillery yeast	8	10	
2102103000	Bakery yeast	8	10	
2102104000	Culture yeast	8	7	
2102109000	Other	8	10	
2102201000	Inactive yeasts	8	5	
2102202000	Nulook㉾	8	10	
2102203010	Of tablet	8	5	
2102203090	Other	8	5	
2102204010	Of tablet	8	5	
2102204090	Other	8	5	
2102209000	Other	8	10	
2102300000	Prepared baking powders	8	7	
2103100000	Soya sauce	8	5	
2103201000	Tomato ketchup	8	7	
2103202000	Tomato sauces	45	15	
2103301000	Mustard flour and meal	8	3	
2103302000	Prepared mustard	8	7	
2103901010	Bean paste	8	5	
2103901020	Chinese bean paste	8	5	
2103901030	Gochujang㉾	45	5	
2103901090	Other	45	5	
2103909010	Mayonnaise	8	3	
2103909020	Instant curry	45	5	
2103909030	Mixed seasonings	45	5/15 [2)]	
2103909040	Maejoo㉾	14	7	
2103909090	Other	45	15	
2104101000	Of meat	18	E	
2104102000	Of fish	30	5	
2104103000	Of vegetable	18	15	
2104109000	Other	18	15	
2104200000	Homogenised composite food preparations	30	10	
2105001010	Not containing cocoa	8	7	
2105001090	Other	8	7	
2105009010	Not containing cocoa	8	5	
2105009090	Other	8	3	
2106101000	Bean-curd	8	3	
2106109020	Protein concentrates	8	0	
2106109030	Textured protein substances	8	0	
2106901010	Cola base	8	0	
2106901020	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s	8	7	
2106901090	Other	8	15	
2106902000	Sugar syrups, containing added flavouring or colouring matter	8	10	
2106903011	Ginseng tea	8	10	
2106903019	Other	8	3	
2106903021	Red ginseng tea	754.3	E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2106903029	Other	754.3	E	
2106904010	Laver	8	0	
2106904090	Other	8	3	
2106909010	Coffee creamer	8	3	
2106909021	Of a butter content, by weight, not exceeding 30 %	8	12	
2106909022	Of a butter content, by weight, exceeding 30 % but not exceeding 70 %	8	12	
2106909023	Of a butter content, by weight, exceeding 70 %	8	10	
2106909030	Preparations for use in manufacturing ice cream	8	7	
2106909040	Autolyzed yeast and other yeast extracts	8	7	
2106909050	Flavors in preparations	8	7	
2106909060	Acorn flour	8	10	
2106909070	Preparations with a basis of aloe	8	5	
2106909080	Of preparations (other than those based on odoriferous substances) of types used in the manufacture of beverages with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0.5 % vol	30	7	
2106909091	Preparations of royal jelly and honey	8	E	
2106909099	Other	8	5	
2201100000	Mineral waters and aerated waters	8	3	
2201901000	Ice and snow	8	3	
2201909000	Other	8	7	
2202101000	Coloured	8	7	
2202109000	Other	8	10	
2202901000	Beverage based on ginseng	8	7	
2202902000	Beverage of fruit juice	9	7	
2202903000	Sikyeⓚ	8	7	
2202909000	Other	8	7	
2203000000	Beer made from malt	30	7	
2204100000	Sparkling wine	15	0	
2204211000	Red wine	15	0	
2204212000	White wine	15	0	
2204219000	Other	15	0	
2204291000	Red wine	15	0	
2204292000	White wine	15	0	
2204299000	Other	15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2204300000	Other grape must	30	0	
2205100000	In containers holding 2 ℓ or less	15	10	
2205900000	Other	15	10	
2206001010	Cider	15	10	
2206001020	Perry	15	10	
2206001090	Other	15	10	
2206002010	Cheongjuⓚ	15	3	
2206002020	Yakjuⓚ	15	3	
2206002030	Takjuⓚ	15	3	
2206002090	Other	15	15	
2206009010	Wine cooler (added the product of heading 20.09 or 22.02, including being made of grapes)	15	5	
2206009090	Other	15	10	
2207101000	Roughly distilled alcohol for beverages	10	E	
2207109010	Fermented alcohol for manufacture of liquors	270	E	
2207109090	Other	30	10	
2207200000	Ethyl alcohol and other spirits, denatured, of any strength	8	15	
2208201000	Cognac	15	10	
2208209000	Other	15	10	
2208301000	Scotch whisky	20	15	
2208302000	Bourbon whisky	20	10	
2208303000	Rye whisky	20	10	
2208309000	Other	20	10	
2208400000	Rum and other spirits obtained by distilling fermented sugarcane products	20	10	
2208500000	Gin and geneva	20	10	
2208600000	Vodka	20	10	
2208701000	Ginseng wine	20	5	
2208702000	Ogarpiⓚ wine	20	15	
2208709000	Other	20	10	
2208901000	Brandies other than that of subheading 2208.20	20	15	
2208904000	Sojuⓚ	30	3	
2208906000	Kaoliang wine	30	5	
2208907000	Tequila	20	5	
2208909000	Other	30	5	
2209001000	Brewery vinegar	8	5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2209009000	Other	8	7	
2301101000	Flours, meals and pellets, of meat or meat offal	9	E	
2301102000	Greaves	5	5	
2301201000	Flours, meals and pellets of fish	5	0	
2301209000	Other	5	0	
2302100000	Of maize (corn)	5	5	
2302300000	Of wheat	2	0	
2302401000	Of rice	5	5	
2302409000	Other	5	5	
2302500000	Of leguminous plants	5	5	
2303100000	Residues of starch manufacture and similar residues	0	0	
2303200000	Beet-pulp, bagasse and other waste of sugar manufacture	5	0	
2303300000	Brewing or distilling dregs and waste	5	0	
2304000000	Oil-cake and other solid residues, whether or not ground or in the form of pellets, resulting from the extraction of soyabean oil	1.8	0	
2305000000	Oil-cake and other solid residues, whether or not ground or in the form of pellets, resulting from the extraction of ground-nut oil	5	0	
2306100000	Of cotton seeds	2	0	
2306200000	Of linseed	5	0	
2306300000	Of sunflower seeds	5	3	
2306410000	Of low erucic acid rape or colza seeds	0	0	
2306490000	Other	0	0	
2306500000	Of coconut or copra	2	0	
2306600000	Of palm nuts or kernels	2	0	
2306901000	Of sesamum seeds	63% or 72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10	
2306902000	Of perilla seeds	5	3	
2306903000	Of maize (corn) germ	5	3	
2306909000	Other	5	3	
2307000000	Wine lees; argol	5	0	
2308001000	Acorns	5	10	
2308002000	Horse-chestnuts	5	10	
2308003000	Cotton seed hulls	5	0	
2308009000	Other	46.4	10	
2309101000	Dog food	5	0	
2309102000	Cat food	5	0	
2309901010	For pigs	4.2	0	
2309901020	For fowls	4.2	0	
2309901030	For fish	5	0	
2309901040	For bovine	4.2	0	
2309901091	Of milk replacer	71	15	
2309901099	Other	5	0	
2309902010	Chiefly on the basis of inorganic substances or minerals (excluding chiefly on the basis of micro-minerals)	50.6	15	
2309902020	Chiefly on the basis of flavourings	50.6	15	
2309902091	Automatic approval import items as of December 31,1994 :1. Peckmor, sessalom, calfnectar and pignectar of FCA Feed flavor starter (conc.)2. FCA Feed nectars (conc.)3. FCA Feed protanox 4. FCA Encila (conc.)5. FCA Sugar mate6. Poultry, fish, mineral, calf, hy sugar and cheese of FFI Ade (conc.)7. Pig, hog, cattle, dairy, beef and kanine of FFI Krave (conc.)8. Pig and fresh of FFI Arome (conc., 2X)9. Pecuaroma-poultry Other	5	0	
2309902099	Other	50.6	15	
2309903010	Chiefly on the basis of antibiotics	5	0	
2309903020	Chiefly on the basis of vitamins	5	0	
2309903030	Chiefly on the basis of micro minerals	5	0	
2309903090	Other	5	0	
2309909000	Other	50.6	15	
2401101000	Flue-cured	20	10	
2401102000	Burley	20	10	
2401103000	Oriental	20	10	
2401109000	Other	20	1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2401201000	Flue-cured	20	10	
2401202000	Burley	20	10	
2401203000	Oriental	20	10	
2401209000	Other	20	10	
2401301000	Stems	20	10	
2401302000	Scraps	20	10	
2401309000	Other	20	10	
2402101000	Cigar	40	15	
2402102000	Cheroot	40	15	
2402103000	Cigarillos	40	15	
2402201000	Filter tip cigarettes	40	15	
2402209000	Other	40	15	
2402900000	Other	40	15	
2403101000	Pipe tobacco	40	15	
2403109000	Other	40	15	
2403911000	Tobacco sheets	32.8	15	
2403919000	Other	40	15	
2403991000	Chewing tobacco	40	15	
2403992000	Snuff	40	15	
2403993000	Tobacco extracts and essences	40	15	
2403999000	Other	40	15	
2501001010	Rock salt	1	0	
2501001020	Sea salt made by the heat of the sun	1	0	
2501009010	Edible salt	8	0	
2501009020	Pure sodium chloride	8	0	
2501009090	Other	8	0	
2502000000	Unroasted iron pyrites	2	0	
2503000000	Sulphur of all kinds, other than sublimed sulphur, precipitated sulphur and colloidal sulphur	2	0	
2504101000	Natural graphite, crystalline	3	0	
2504102000	Natural graphite, amorphous	3	0	
2504109000	Other	3	0	
2504901000	Natural graphite, crystalline	3	0	
2504902000	Natural graphite, amorphous	3	0	
2504909000	Other	3	0	
2505100000	Silica sands and quartz sands	3	0	
2505901010	Clayey sand	3	0	
2505901020	Felspathic sand	3	0	
2505901090	Other	3	0	
2505909000	Other	3	0	
2506101000	Containing less than 0.06 % of impurities	3	0	
2506102000	Containing not less than 0.06 % but not more than 0.1 % of impurities	3	0	
2506103000	Containing more than 0.1 % of impurities	3	0	
2506201000	Crude or roughly trimmed	3	0	
2506209000	Other	3	0	
2507001010	Not calcined	3	0	
2507001090	Other	3	0	
2507002010	Gairome	3	0	
2507002020	Kibushi	3	0	
2507002090	Other	3	0	
2507009000	Other	3	0	
2508100000	Bentonite	3	0	
2508300000	Fire-clay	3	0	
2508401000	Acid clay	3	0	
2508402000	Decolourising earths and fuller's earth	3	0	
2508409000	Other	3	0	
2508501000	Andalusite	3	0	
2508502000	Kyanite	3	0	
2508503000	Sillimanite	3	0	
2508600000	Mullite	3	0	
2508701000	Shamotte	3	0	
2508702000	Dinas earth	3	0	
2509000000	Chalk	3	0	
2510101000	Natural calcium phosphates	0	0	
2510102000	Natural aluminium calcium phosphates	1	0	
2510109000	Other	1	0	
2510201000	Natural calcium phosphates	3	0	
2510202000	Natural aluminium calcium phosphates	3	0	
2510209000	Other	3	0	
2511100000	Natural barium sulphate (barytes)	3	0	
2511200000	Natural barium carbonate (witherite)	3	0	
2512000000	Siliceous fossil meals (for example, kieselguhr, tripolite and diatomite) and similar siliceous earths, whether or not calcined, of an apparent specific gravity of 1 or less	3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2513101000	Crude or in irregular pieces, including crushed pumice ("bimskies")	3	0	
2513109000	Other	3	0	
2513201010	Emery	3	0	
2513201020	Natural corundum	3	0	
2513201030	Natural garnet	3	0	
2513201090	Other	3	0	
2513202010	Emery	3	0	
2513202020	Natural corundum	3	0	
2513202030	Natural garnet	3	0	
2513202090	Other	3	0	
2514001000	Crude or roughly trimmed	3	5	
2514009000	Other	3	5	
2515111000	Marble	3	0	
2515112000	Travertine	3	0	
2515121000	Marble	3	0	
2515122000	Travertine	3	0	
2515200000	Ecaussine and other calcareous monumental or building stone; alabaster	3	0	
2516110000	Crude or roughly trimmed	3	5	
2516120000	Merely cut, by sawing or otherwise, into blocks or slabs of a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ape	3	5	
2516201000	Crude or roughly trimmed	3	5	
2516209000	Merely cut, by sawing or otherwise, into blocks or slabs of a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ape	3	5	
2516901000	Crude or roughly trimmed	3	5	
2516909000	Other	3	5	
2517101000	Pebbles	3	0	
2517102000	Broken or crushed stone	3	0	
2517109000	Other	3	0	
2517200000	Macadam of slag, dross or similar industrial waste,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the materials cited in subheading 2517.10	3	0	
2517300000	Tarred macadam	3	0	
2517410000	Of marble	3	0	
2517491000	Of basalt	3	5	
2517492000	Of granite	3	5	
2517499000	Other	3	5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2518100000	Dolomite, not calcined or sintered	3	0	
2518200000	Calcined or sintered dolomite	3	0	
2518300000	Dolomite ramming mix	3	0	
2519100000	Natural magnesium carbonate (magnesite)	3	0	
2519901000	Fused or dead-burned magnesia	3	0	
2519902000	Natural magnesium oxide	3	0	
2519909000	Other	3	0	
2520101000	Gypsum	5	0	
2520102000	Anhydrite	5	0	
2520201000	Specially calcined or finely ground for use in dentistry	5	0	
2520209000	Other	5	0	
2521001000	Limestone	3	0	
2521009000	Other	3	0	
2522100000	Quicklime	3	0	
2522200000	Slaked lime	3	0	
2522300000	Hydraulic lime	3	0	
2523100000	Cement clinkers	5	7	
2523210000	White cement, whether or not artificially coloured	5	7	
2523290000	Other	5	7	
2523300000	Aluminous cement	8	7	
2523901000	Slag cements	5	7	
2523909000	Other	5	7	
2524100000	Crocidolite	5	0	
2524901000	Amosite	5	0	
2524902000	Chrysotile	5	0	
2524909000	Other	5	0	
2525100000	Crude mica and mica rifted into sheets or splittings	3	0	
2525200000	Mica powder	3	0	
2525300000	Mica waste	3	0	
2526101000	Whether or not roughly trimmed or merely cut, by sawing or otherwise, into blocks or slabs of a rectangular shape (including square)	3	0	
2526109000	Other	3	0	
2526200000	Crushed or powdered	5	0	
2528100000	Natural sodium borates and concentrates thereof (whether or not calcined)	3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2528901000	Calcium borates	3	0	
2528902000	Magnesium chloroborate	3	0	
2528903000	Natural boric acid	3	0	
2528909000	Other	3	0	
2529100000	Feldspar	3	0	
2529211000	Powder	2	0	
2529219000	Other	2	0	
2529221000	Powder	2	0	
2529229000	Other	2	0	
2529301000	Leucite	2	0	
2529302000	Nepheline	2	0	
2529303000	Nepheline syenite	2	0	
2530101000	Vermiculite	3	0	
2530102000	Perlites and chlorites	3	0	
2530200000	Kieserite, epsomite (natural magnesium sulphates)	3	0	
2530901000	Natural arsenic sulfides	3	0	
2530902000	Pyrolusite (manganese ore) suitable for manufacturing dry batteries	3	0	
2530903000	Strontianite	3	0	
2530904000	Cinnabar	3	0	
2530905000	Pyrophyllite	3	0	
2530906000	Zeolites	3	0	
2530907000	Alunites	3	0	
2530908000	Wollastonites	3	0	
2530909010	Pottery stone	3	0	
2530909020	Sericites	3	0	
2530909030	Earth colours	8	0	
2530909040	Natural micaceous iron oxides	8	0	
2530909050	Natural cryolite and natural chiolite	3	0	
2530909091	Natural calcium carbonate	3	0	
2530909099	Other	3	0	
2601111000	Red haematite	0	0	
2601112000	Magnetite	0	0	
2601119000	Other	0	0	
2601121000	Red haematite	0	0	
2601122000	Magnetite	0	0	
2601129000	Other	0	0	
2601200000	Roasted iron pyrites	1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2602000000	Manganese ores and concentrates, including ferruginous manganese ores and concentrates with a manganese content of 20 % or more, calculated on the dry weight	0	0	
2603000000	Copper ores and concentrates	0	0	
2604000000	Nickel ores and concentrates	0	0	
2605000000	Cobalt ores and concentrates	0	0	
2606000000	Aluminium ores and concentrates	0	0	
2607000000	Lead ores and concentrates	0	0	
2608000000	Zinc ores and concentrates	0	0	
2609000000	Tin ores and concentrates	0	0	
2610000000	Chromium ores and concentrates	0	0	
2611001000	Wolframite	0	0	
2611002000	Scheelite	0	0	
2611009000	Other	0	0	
2612100000	Uranium ores and concentrates	0	0	
2612200000	Thorium ores and concentrates	0	0	
2613100000	Roasted	0	0	
2613900000	Other	0	0	
2614001000	Rutile	0	0	
2614002000	Anatase	0	0	
2614009000	Other	0	0	
2615100000	Zirconium ores and concentrates	0	0	
2615901000	Niobium ores and concentrates	0	0	
2615902000	Tantalum ores and concentrates	0	0	
2615903000	Vanadium ores and concentrates	0	0	
2616100000	Silver ores and concentrates	0	0	
2616901000	Gold ores and concentrates	0	0	
2616902000	Platinum ores and concentrates (including ores and concentrates of platinum group)	0	0	
2617100000	Antimony ores and concentrates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2617901000	Mercury ores and concentrates	0	0	
2617902000	Germanium ores and concentrates	0	0	
2617903000	Beryllium ores and concentrates	0	0	
2617904000	Bismuth ores and concentrates	0	0	
2617909000	Other	0	0	
2618000000	Granulated slag (slag sand) from the manufacture of iron or steel	2	0	
2619001010	Blast furnace slag	2	0	
2619001090	Other	2	0	
2619002000	Dross	2	0	
2619003000	Scalings	2	0	
2619009000	Other	2	0	
2620110000	Hard zinc spelter	2	0	
2620190000	Other	2	0	
2620210000	Leaded gasoline sludges and leaded anti-knock compound sludges	2	0	
2620290000	Other	2	0	
2620300000	Containing mainly copper	2	0	
2620400000	Containing mainly aluminium	2	0	
2620600000	Containing arsenic, mercury, thallium or their mixtures, of a kind used for the extraction of arsenic or those metals or for the manufacture of their chemical compounds	2	0	
2620910000	Containing antimony, beryllium, cadmium, chromium or their mixtures	2	0	
2620990000	Other	2	0	
2621100000	Ash and residues from the incineration of municipal waste	2	0	
2621900000	Other	2	0	
2701110000	Anthracite	0	0	
2701121000	Coking coal, heavy	0	0	
2701122000	Other coking coal	0	0	
2701129010	Containing a volatile matter less than 22 % by weight (on a dry, mineral-matter-free basis)	0	0	
2701129090	Other	0	0	
2701190000	Other coal	0	0	
2701201000	Briquettes	1	0	
2701202000	Ovoids	1	0	
2701209000	Other	1	0	
2702100000	Lignite, whether or not pulverised, but not agglomerated	1	0	
2702200000	Agglomerated lignite	1	0	
2703001000	Not agglomerated	1	0	
2703002000	Agglomerated	1	0	
2704001010	Of coal	3	0	
2704001090	Other	3	0	
2704002000	Semi-coke	3	0	
2704003000	Retort carbon	3	0	
2705000000	Coal gas, water gas, producer gas and similar gases, other than petroleum gases and other gaseous hydrocarbons	5	0	
2706001000	Coal tars	5	0	
2706002000	Tars from lignit or peat	5	0	
2706009000	Other	5	0	
2707100000	Benzol (benzene)	3	0	
2707200000	Toluol (toluene)	3	0	
2707300000	Xylol (xylenes)	3	0	
2707400000	Naphthalene	5	0	
2707500000	Other aromatic hydrocarbon mixtures of which 65 % or more by volume (including losses) distils at 250°C by the ASTM D 86 method	5	0	
2707910000	Creosote oils	5	0	
2707991000	Solvent naphtha	5	0	
2707992000	Anthracene	5	0	
2707993000	Phenols	8	0	
2707999000	Other	5	0	
2708100000	Pitch	5	0	
2708200000	Pitch coke	5	0	
2709001010	Of a specific gravity more than 0.796 but not more than 0.841 at 15°C	3	5	
2709001020	Of a specific gravity more than 0.841 but not more than 0.847 at 15°C	3	5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2709001030	Of a specific gravity more than 0.847 but not more than 0.855 at 15°C	3	5	
2709001040	Of a specific gravity more than 0.855 but not more than 0.869 at 15°C	3	5	
2709001050	Of a specific gravity more than 0.869 but not more than 0.885 at 15°C	3	5	
2709001060	Of a specific gravity more than 0.885 but not more than 0.899 at 15°C	3	5	
2709001070	Of a specific gravity more than 0.899 but not more than 0.904 at 15°C	3	5	
2709001080	Of a specific gravity more than 0.904 but not more than 0.966 at 15°C	3	5	
2709001090	Other	3	5	
2709002000	Crude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3	5	
2710111000	Motor spirit	5	0	
2710112000	Aviation spirit	5	0	
2710113000	Propylene tetramer	5	0	
2710114000	Naphtha	0	0	
2710115000	Natural gas liquid	0	0	
2710119000	Other	5	0	
2710191010	Jet fuel	5	0	
2710191090	Other	5	0	
2710192010	Kerosene	5	0	
2710192020	Jet fuel	5	0	
2710192030	n-paraffine	5	0	
2710192090	Other	5	0	
2710193000	Gas oils	5	0	
2710194010	Light fuel oil (bunker A)	5	0	
2710194020	Fuel oil (bunker B)	5	0	
2710194030	Bunker C	5	0	
2710194090	Other	5	0	
2710195010	Raw oils	7	0	
2710195020	Lubricating base oil	7	0	
2710196000	Extender oil	8	0	
2710197110	Aviation engine oil	7	0	
2710197120	Engine oil for automotive	7	0	
2710197130	Engine oil for marine use	7	0	
2710197210	Cylinder oil	7	0	
2710197220	Spindle oil	7	0	
2710197230	Gear oil	7	0	
2710197240	Turbine oil	7	0	
2710197250	Refrigerating machine oil	7	0	
2710197310	Compound oil	7	0	
2710197320	Liquid paraffin	7	0	
2710197330	Automatic transmission fluid	7	0	
2710197410	Anti corrosive oil	7	0	
2710197420	Cutting oil	7	0	
2710197430	Cleansing oil	7	0	
2710197440	Mould release oil	7	0	
2710197450	Hydraulic brake oil	7	0	
2710197510	Process oil	7	0	
2710197520	Insulating oil	7	0	
2710197530	Heat treating oil	7	0	
2710197540	Heat transfer oil	7	0	
2710197900	Other	7	0	
2710198010	Containing aluminium as additive	8	0	
2710198020	Containing calcium as additive	8	0	
2710198030	Containing sodium as additive	8	0	
2710198040	Containing lithium as additive	8	0	
2710198090	Other	8	0	
2710199000	Other	8	0	
2710911010	Of motor spirit, aviation spirit and jet fuel	5	0	
2710911020	Of naphtha and natural gas liquid	0	0	
2710911090	Other	5	0	
2710912010	Of kerosene and jet fuel	5	0	
2710912090	Other	5	0	
2710913000	Of gas oils	5	0	
2710914010	Of light fuel oil (bunker A), fuel oil (bunker B) and bunker C	5	0	
2710914090	Other	5	0	
2710915000	Of raw oils, lubricating oil (other than extender oil) and lubricating base oil	7	0	
2710919000	Other	8	0	
2710991010	Of motor spirit, aviation spirit and jet fuel	5	0	
2710991020	Of naphtha and natural gas liquid	0	0	
2710991090	Other	5	0	
2710992010	Of kerosene and jet fuel	5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2710992090	Other	5	0	
2710993000	Of gas oils	5	0	
2710994010	Of light fuel oil (bunker A), fuel oil (bunker B) and bunker C	5	0	
2710994090	Other	5	0	
2710995000	Of raw oils, lubricating oil (other than extender oil) and lubricating base oil	7	0	
2710999000	Other	8	0	
2711110000	Natural gas	3	0	
2711120000	Propane	3	0	
2711130000	Butanes	3	0	
2711141000	Ethylene	5	0	
2711142000	Propylene	5	0	
2711143000	Butylene	5	0	
2711144000	Butadiene	5	0	
2711190000	Other	5	0	
2711210000	Natural gas	3	0	
2711290000	Other	5	0	
2712101000	Vaseline	8	0	
2712109000	Other	8	0	
2712200000	Paraffin wax containing by weight less than 0.75 % of oil	8	0	
2712901010	Slack wax and scale wax	8	0	
2712901020	Microcrystalline wax	8	0	
2712901090	Other	8	0	
2712909010	Montan wax	8	0	
2712909020	Peat wax	8	0	
2712909030	Ceresin wax	8	0	
2712909040	Synthetic paraffin wax	8	0	
2712909090	Other	8	0	
2713110000	Not calcined	5	0	
2713120000	Calcined	5	0	
2713200000	Petroleum bitumen	5	0	
2713900000	Other residues of petroleum oils or of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5	0	
2714100000	Bituminous or oil shale and tar sands	5	0	
2714901000	Bitumen and asphalt, natural	5	0	
2714902000	Asphaltites	5	0	
2714903000	Asphaltic rock	5	0	
2715001000	Cut-backs	5	0	
2715002000	Emulsions or stable suspensions of asphalt, bitumen, pitch or tar	5	0	
2715003000	Mastics	5	0	
2715009000	Other	5	0	
2716000000	Electrical energy	5	0	
2801100000	Chlorine	5.5	0	
2801200000	Iodine	5.5	0	
2801301000	Fluorine	5.5	0	
2801302000	Bromine	5.5	0	
2802001000	Sulphur, sublimed	5	0	
2802002000	Sulphur, precipitated	5	0	
2802003000	Colloidal sulfur	5	0	
2803001000	Acetylene black	5.5	0	
2803009010	Carbon blacks	5.5	0	
2803009090	Other	5.5	3	
2804100000	Hydrogen	5.5	0	
2804210000	Argon	5.5	0	
2804291000	Helium	5.5	0	
2804292000	Neon	5.5	0	
2804293000	Krypton	5.5	0	
2804294000	Xenon	5.5	0	
2804299000	Other	5.5	0	
2804300000	Nitrogen	5.5	0	
2804400000	Oxygen	5.5	0	
2804501000	Boron	5.5	0	
2804502000	Tellurium	5.5	0	
2804610000	Containing by weight not less than 99.99 % of silicon	3	0	
2804690000	Other	5.5	3	
2804701000	Yellow phosphorous	5	0	
2804709000	Other	5.5	0	
2804800000	Arsenic	5.5	0	
2804900000	Selenium	5.5	0	
2805110000	Sodium	5.5	0	
2805120000	Calcium	5.5	0	
2805190000	Other	5.5	0	
2805301000	Cerium group	5.5	0	
2805302000	Terbium group	5.5	0	
2805303000	Erbium group	5.5	0	
2805304000	Yttrium	5.5	0	
2805305000	Scandium	5.5	0	
2805309000	Other	5.5	0	
2805400000	Mercury	5.5	0	
2806100000	Hydrogen chloride (hydrochloric acid)	5.5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2806200000	Chlorosulphuric acid	5.5	0	
2807001010	For making semiconductor	5.5	0	
2807001090	Other	5.5	0	
2807002000	Oleum	5.5	0	
2808001010	For making semiconductor	5.5	0	
2808001090	Other	5.5	0	
2808002000	Sulphonitric acids	5.5	0	
2809100000	Diphosphorus pentaoxide	5.5	0	
2809201010	For making semiconductor	5.5	0	
2809201090	Other	5.5	0	
2809202010	Metaphosphoric acid	5.5	0	
2809202020	Pyrophosphoric acid	5.5	0	
2809202090	Other	5.5	0	
2810001010	Diboron trioxide	5.5	0	
2810001090	Other	5.5	0	
2810002000	Ortho boric acid	5.5	0	
2810003000	Meta boric acid	5.5	0	
2810009000	Other	5.5	3	
2811111000	For making semiconductor	5.5	0	
2811119000	Other	5.5	0	
2811191000	Hydrogensulphide	5.5	0	
2811192000	Hydrobromic acid	5.5	0	
2811193000	Sulphamic acid	5.5	0	
2811194000	Perchloric acid	5.5	0	
2811195000	Chloric acid	5.5	0	
2811196000	Hypophosphorous acid	5.5	0	
2811197000	Phosphorous acid	5.5	0	
2811198000	Arsenic acid	5.5	0	
2811199010	Hydrogen cyanide	5.5	0	
2811199090	Other	5.5	0	
2811210000	Carbon dioxide	5.5	3	
2811221000	White carbon	5.5	0	
2811229010	Silicagel	5.5	3	
2811229090	Other	5.5	3	
2811291000	Carbon monoxide	5.5	0	
2811292000	Nitrous oxide	5.5	3	
2811293000	Nitrogen dioxide	5.5	0	
2811294000	Arsenic trioxide	5.5	0	
2811295000	Arsenic pentoxide	5.5	0	
2811299000	Other	5.5	0	
2812101010	Iodine trichloride	5	0	
2812101020	Phosphorous trichloride	5	0	
2812101030	Phosphorous pentachloride	5	0	
2812101040	Arsenic trichloride	5	0	
2812101050	Sulphur monochloride	5	0	
2812101060	Sulphur dichloride	5	0	
2812101090	Other	5	0	
2812102010	Thionyl chloride	5	0	
2812102020	Carbonyl dichloride (phosgene)	5	0	
2812102030	Phosphorous oxychloride	5	0	
2812102090	Other	5	0	
2812901000	Boron trifluoride	5.5	0	
2812902000	Sulphur hexafluoride	5.5	0	
2812909000	Other	5.5	0	
2813100000	Carbon disulphide	5.5	0	
2813901020	Phosphorous pentasulphide	5.5	0	
2813901090	Other	5.5	0	
2813902010	Diarsenic pentasulphide	5.5	0	
2813902090	Other	5.5	0	
2813903000	Silicon sulphide	5.5	0	
2813909000	Other	5.5	0	
2814100000	Anhydrous ammonia	1	0	
2814200000	Ammonia in aqueous solution	2	0	
2815110000	Solid	5.5	0	
2815120000	In aqueous solution (soda lye or liquid soda)	8	0	
2815200000	Potassium hydroxide (caustic potash)	5.5	0	
2815301000	Sodium peroxide	5.5	0	
2815302000	Potassium peroxide	5.5	0	
2816101000	Magnesium hydroxide	5.5	0	
2816102000	Magnesium peroxide	5.5	0	
2816400000	Oxides, hydroxides and peroxides, of strontium or barium	5.5	0	
2817001000	Zinc oxide	5.5	3	
2817002000	Zinc peroxide	5.5	0	
2818101000	Sized grains	3	0	
2818109000	Other	3	0	
2818200000	Aluminium oxide, other than artificial corundum	1	0	
2818301000	Alumina gel	5.5	0	
2818309000	Other	5.5	0	
2819100000	Chromium trioxide	5.5	0	
2819901010	Chromic oxides	5.5	0	
2819901090	Other	5.5	0	
2819902000	Chromium hydroxides	5.5	0	
2820100000	Manganese dioxide	5.5	3	
2820901000	Manganese oxide	5.5	0	
2820902000	Manganic oxide	5.5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2820909000	Other	5.5	0	
2821101000	Iron oxides	5.5	3	
2821102000	Iron hydroxides	5.5	0	
2821200000	Earth colours	5.5	0	
2822001010	Cobaltic oxide	5.5	0	
2822001091	For manufacturing secondary battery	4	0	
2822001099	Other	5.5	0	
2822002010	Cobaltous hydroxide	5.5	0	
2822002090	Other	5.5	0	
2823001000	Anatase type	5.5	3	
2823009000	Other	5.5	3	
2824100000	Lead monoxide (litharge, massicot)	5.5	0	
2824901000	Red lead and orange lead	5.5	0	
2824909000	Other	5.5	0	
2825101000	Hydrazine hydrate	5.5	0	
2825109010	Hydrazine	5.5	0	
2825109020	Inorganic salts of hydrazine	5.5	0	
2825109030	Hydroxylamine	5.5	0	
2825109041	Hydroxyl ammonium chloride (hydroxylamine hydrochloride)	5.5	0	
2825109049	Other	5.5	0	
2825201000	Lithium oxide	5.5	0	
2825202000	Lithium hydroxide	5.5	0	
2825301000	Vanadic pentoxide	2	0	
2825309000	Other	3	0	
2825401000	Nickel oxides	5.5	3	
2825402000	Nickel hydroxides	5.5	0	
2825501000	Copper oxides	5.5	0	
282550201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825502090	Other	5.5	0	
2825601000	Germanium oxides	5.5	0	
2825602000	Zirconium dioxide	5.5	3	
2825701000	Molybdenum oxides	3	0	
2825702000	Molybdenum hydroxide	5.5	0	
2825800000	Antimony oxides	5.5	0	
2825901010	Calcium oxide	5.5	0	
2825901020	Tungsten oxides	1	0	
2825901030	Tin oxides	5.5	0	
2825901090	Other	5.5	0	
2825902010	Calcium hydroxide	5.5	0	
2825902020	Manganes hydroxides	5.5	0	
2825902030	Tungsten hydroxides	5.5	0	
2825902040	Tin hydroxides	5.5	0	
2825902090	Other	5.5	0	
2825903010	Nickel peroxides	5.5	0	
2825903090	Other	5.5	0	
2825909000	Other	5.5	0	
2826120000	Of aluminium	5.5	0	
2826191000	Calcium fluoride	5.5	0	
2826193010	Potassium hydrogen fluoride	5.5	0	
2826193090	Other	5.5	0	
2826194000	Ammonium or sodium fluoride	5.5	0	
2826195000	Tungsten Hexafluoride(WF6)	5.5	0	
2826199000	Other	5.5	0	
2826300000	Sodium hexafluoroaluminate (synthetic cryolite)	5.5	0	
2826901000	Artificial chiolite	5.5	0	
2826902000	Calcium fluorosilicate	5.5	0	
2826903000	Fluoroborates	5.5	0	
2826904000	Fluorophosphates	5.5	0	
2826905000	Fluorosulphates	5.5	0	
2826906000	Fluorosilicates of sodium or of potassium	5.5	0	
2826909000	Other	5.5	0	
2827100000	Ammonium chloride	5.5	0	
2827200000	Calcium chloride	5.5	0	
2827310000	Of magnesium	5.5	0	
2827320000	Of aluminium	5.5	0	
2827350000	Of nickel	5.5	0	
2827391000	Of copper	5.5	0	
2827399000	Other	5.5	0	
2827411000	Copper chloride oxides	5.5	0	
282741201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827412090	Other	5.5	0	
2827491000	Chloride oxides	5.5	0	
2827492000	Chloride hydroxides	5.5	0	
2827511000	Sodium bromide	5.5	0	
2827512000	Potassium bromide	5.5	0	
2827591000	Calcium bromide	5.5	0	
2827599000	Other	5.5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2827601000	Iodide oxides	5.5	3	
2827609010	Potassium iodide	5.5	0	
2827609090	Other	5.5	3	
2828100000	Commercial calcium hypochlorite and other calcium hypochlorites	5.5	0	
2828901010	Sodium hypochlorite	5.5	0	
2828901020	Potassium hypochlorite	5.5	0	
2828901090	Other	5.5	0	
2828902010	Sodium chlorite	5.5	0	
2828902020	Aluminium chlorite	5.5	0	
2828902090	Other	5.5	0	
2828903000	Hypobromites	5.5	0	
2829110000	Of sodium	5.5	0	
2829191000	Potassium chlorate	5.5	0	
2829192000	Barium chlorate	5.5	0	
2829199000	Other	5.5	0	
2829901010	Sodium perchlorate	5.5	0	
2829901020	Ammonium perchlorate	5.5	0	
2829901090	Other	5.5	0	
2829902010	Bromates	5.5	0	
2829902020	Perbromates	5.5	0	
2829902030	Iodates	5.5	0	
2829902040	Periodates	5.5	0	
2830101000	Sodium hydrogen sulphide	5.5	0	
2830109000	Other	5.5	0	
2830901000	Sulphides	5.5	0	
2830902000	Polysulphides	5.5	0	
2831101000	Sodium dithionite	5.5	0	
2831102000	Sodium sulphoxy late (sodium form aldehyde sulphoxylate)	5.5	0	
2831901000	Dithionites	5.5	0	
2831902000	Sulphoxylates	5.5	0	
2832101000	Sodium bisulphite	5.5	0	
2832109000	Other	5.5	0	
2832201000	Ammonium sulphite	5.5	0	
2832202000	Potassium sulphites	5.5	0	
2832203000	Calcium sulphites	5.5	0	
2832209000	Other	5.5	0	
2832301000	Ammonium thiosulphate	5.5	0	
2832302000	Sodium thiosulphate	5.5	0	
2832303000	Potassium thiosulphate	5.5	0	
2832309000	Other	5.5	0	
2833110000	Disodium sulphate	5.5	0	
2833191000	Sodium hydrogen sulphate	5.5	0	
2833192000	Disodium disulphate	5.5	0	
2833199000	Other	5.5	0	
2833210000	Of magnesium	5.5	0	
2833220000	Of aluminium	5.5	0	
2833240000	Of nickel	5.5	0	
283325100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833259000	Other	5.5	0	
2833270000	Of barium	5.5	0	
2833291000	Iron sulphates	5.5	0	
2833299000	Other	5.5	0	
2833300000	Alums	5.5	0	
2833401000	Diammonium peroxodisulphate	5.5	0	
2833402000	Disodium peroxodisulphate	5.5	0	
2833403000	Calcium peroxodisulphate	5.5	0	
2833409000	Other	5.5	0	
2834101000	Sodium nitrite	5.5	0	
2834109000	Other	5.5	0	
2834210000	Of potassium	5.5	0	
2834291000	Barium nitrate	5.5	0	
2834299000	Other	5.5	0	
2835101010	Sodium hypophosphite	5.5	0	
2835101020	Calcium hypophosphite	5.5	0	
2835101090	Other	5.5	0	
2835102000	Phosphites	5.5	0	
2835221000	Of mono-sodium	5.5	0	
2835222000	Of disodium	5.5	0	
2835240000	Of potassium	5.5	0	
2835250000	Calcium hydrogenorthophosphate ("dicalcium phosphate")	5.5	0	
2835260000	Other phosphates of calcium	5.5	0	
2835291000	Aluminium phosphate	5.5	0	
2835299000	Other polyphosphates	5.5	0	
2835310000	Sodium triphosphate (sodium tripolyphosphate)	5.5	3	
2835391000	Sodium metaphosphate	5.5	3	
2835392000	Sodium pyrophosphate	5.5	3	
2835399000	Other	5.5	3	
2836200000	Disodium carbonate	4	0	
2836300000	Sodium hydrogencarbonate (sodium bicarbonate)	5.5	3	
2836400000	Potassium carbonates	5.5	0	
2836500000	Calcium carbonate	5.5	0	
2836600000	Barium carbonate	5.5	0	
2836910000	Lithium carbonates	5.5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2836920000	Strontium carbonate	5.5	0	
2836991010	Magnesium carbonate	5.5	0	
2836991020	Commercial ammonium carbonate and other ammonium carbonates	5.5	0	
2836991090	Other	5.5	0	
2836992000	Peroxocarbonates (percarbonates)	5.5	0	
2837111000	Sodium cyanides	5.5	0	
2837112000	Sodium cyanide oxides	5.5	0	
2837191010	Potassium cyanide	5.5	0	
2837191020	Copper cyanides	5.5	0	
2837191030	Zinc cyanide	5.5	0	
2837191090	Other	5.5	0	
2837192000	Cyanide oxides	5.5	0	
2837201000	Ferrocyanides	5.5	0	
2837202000	Ferricyanides	5.5	0	
2837209000	Other	5.5	0	
2839110000	Sodium metasilicates	5.5	0	
2839190000	Other	5.5	3	
2839901000	Zirconium silicates	5.5	3	
2839902000	Barium silicates	5.5	0	
2839909000	Other	5.5	3	
2840110000	Anhydrous	5	0	
2840190000	Other	5	0	
2840200000	Other borates	5	3	
2840300000	Peroxoborates (perborates)	5	0	
2841300000	Sodium dichromate	5.5	0	
2841501000	Potassium chromate	5.5	0	
2841509000	Other	5.5	0	
2841610000	Potassium permanganate	5.5	0	
2841691000	Manganites	5.5	0	
2841692000	Manganates	5.5	0	
2841693000	Permanganates	5.5	0	
2841700000	Molybdates	5.5	0	
2841800000	Tungstates (wolframates)	5	3	
2841901000	Stannates	5.5	0	
2841902010	Barium titannate	5.5	0	
2841902020	Strontium titannate	5.5	0	
2841902030	Lead titannate	5.5	0	
2841902090	Other	5.5	0	
2841903000	Antimonates	5.5	0	
2841904000	Ferrates and ferrites	5.5	0	
2841905000	Vanadates	5.5	0	
2841906000	Bismuthates	5.5	0	
2841909000	Other	5.5	0	
2842101000	Aluminosilicates	6.5	0	
2842109000	Other	5.5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2842901000	Salts of selenium acids	5.5	0	
2842903000	Double or complex salts containing sulphur	5.5	0	
2842905000	Double or complex salts of selenium	5.5	0	
2842909000	Other	5.5	0	
2843101000	Colloidal silver	5.5	0	
2843102000	Colloidal gold	5.5	0	
2843103000	Colloidal platinum	5.5	0	
2843109000	Other	5.5	0	
2843211000	For making semiconductor	5.5	3	
2843219000	Other	5.5	0	
2843291000	For making semiconductor	5.5	0	
2843299000	Other	5.5	0	
2843301000	Potassium gold cyanide for making semiconductor	5.5	0	
2843309000	Other	5.5	0	
2843901000	Amalgams	5.5	0	
2843909010	Platinum compounds	5.5	0	
2843909090	Other	5.5	0	
2844101000	Natural uranium	0	0	
2844102000	Dispersions (containing natural uranium or natural uranium compounds)	0	0	
2844109000	Other	0	0	
2844201000	Uranium enriched in U235	0	0	
2844202000	Dispersions (containing uranium enriched in U235, plutonium or compounds of these products)	0	0	
2844209000	Other	0	0	
2844301000	Dispersions (containing uranium depleted in U235, thorium or compounds of these products)	0	0	
2844309000	Other	0	0	
2844401000	Radioactive elements	0	0	
2844402000	Radioactive isotopes	0	0	
2844403000	Dispersions (containing radioactive elements, isotopes or compound)	0	0	
2844409000	Other	0	0	
2844500000	Spent (irradiated) fuel elements (cartridges) of nuclear reactors	0	0	
2845100000	Heavy water (deuterium oxide)	0	0	
2845901000	Heavy hydrogen (deuterium)	0	0	
2845902000	Isotopes of carbon	0	0	
2845909000	Other	0	0	
2846100000	Cerium compounds	5	0	
2846901000	Yttrium oxide	5	0	
2846909000	Other	5	3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2847002000	For making semiconductor	5.5	0	
2847009000	Other	5.5	0	
2848001000	Of copper (phosphor copper), containing more than 15 % by weight of phosphorus	5.5	0	
2848002000	Aluminium phosphide	5.5	0	
2848009000	Other	5.5	3	
2849100000	Of calcium	5.5	0	
2849200000	Of silicon	5	3	
2849901000	Complex carbides	5.5	0	
2849909010	Tungsten carbides	5.5	0	
2849909090	Other	5.5	0	
2850001000	Hydrides	5.5	3	
2850002000	Nitrides	5.5	0	
2850003000	Azides	5.5	0	
2850004000	Silicides	5.5	0	
2850005000	Borides	5.5	0	
2852001000	Of subheading 2825.90, 2827.39, 2827.49, 2827.60, 2830.90, 2833.29, 2834.29, 2835.39, 2837.19, 2837.20, 2841.50, 2842.10, 2842.90, 2843.90, 2848.00, 2849.90, 2850.00 or 2853.00	5.5	0	
2852002000	Of subheading 2918.11, 2931.00, 2932.99, 2934.99.9090, 3201.90.2000, 3201.90.4000, 3206.50, 3707.90, 3822.00.1091 or 3822.00.2091	6.5	0	
2852003000	Of subheading 2934.99.2000, 3822.00.1092 or 3822.00.2092	6.5	0	
2852004000	Of subheading 3502.90 or 3504.00	8	0	
2852005000	Of subheading of 3822.00.101, 3822.00.102, 3822.00.1093, 3822.00.201, 3822.00.202 or 3822.00.2093	0	0	
2852006000	Of subheading 3822.00.1099 or 3822.00.2099	8	0	
2853001000	Distilled or conductivity water and water of similar purity	5.5	0	
2853002000	Compressed air	5.5	0	
2853003000	Amalgam	5.5	0	
2853004010	Cyanogen chloride	5.5	0	
2853004090	Other	5.5	0	
2853005000	Alkali amides	5.5	0	
2853009000	Other	5.5	0	
2901101000	Butanes	0	0	
2901102000	Hexanes	0	0	
2901103000	Heptanes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2901109000	Other	0	0	
2901210000	Ethylene	0	0	
2901220000	Propene (propylene)	0	0	
2901230000	Butene (butylene) and isomers thereof	0	0	
2901241000	Buta-1,3-diene	0	0	
2901242000	Isoprene	0	0	
2901291000	Hexene	0	0	
2901292000	Octene	0	0	
2901299000	Other	0	0	
2902110000	Cyclohexane	5	0	
2902191000	Ethylidene Norbornene	5	0	
2902199000	Other	5	0	
2902200000	Benzene	3	0	
2902300000	Toluene	3	0	
2902410000	o-xylene	5	0	
2902420000	m-xylene	5	0	
2902430000	p-xylene	3	0	
2902440000	Mixed xylene isomers	3	0	
2902500000	Styrene	0	0	
2902600000	Ethylbenzene	5	0	
2902700000	Cumene	3	0	
2902901000	Naphthalene	0	0	
2902902000	Methylnaphthalene	0	0	
2902903000	Methyl styrene	0	0	
2902909000	Other	0	0	
2903111000	Chloromethane (methyl chloride)	5.5	0	
2903112000	Chloroethane (ethyl chloride)	5.5	0	
2903120000	Dichloromethane (methylene chloride)	5.5	0	
2903130000	Chloroform (trichloromethane)	5.5	0	
2903140000	Carbon tetrachloride	5.5	0	
2903150000	Ethylene dichloride (ISO) (1,2-dichloroethane)	5	0	
2903191000	1,1,1-trichloroethane (methyl chloroform)	5.5	0	
2903199000	Other	5.5	0	
2903210000	Vinyl chloride (chloroethylene)	5.5	0	
2903220000	Trichloroethylene	5.5	0	
2903230000	Tetrachloroethylene (perchloroethylene)	5.5	0	
2903290000	Other	5.5	0	
2903310000	Ethylene dibromide (ISO) (1,2-dibromoethane)	5.5	0	
2903391000	Bromomethane (methyl bromide)	5.5	0	
2903392000	Bromoethane, excluding 1,2-dibromoethane	5.5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2903393000	Iodomethane	5.5	0	
2903394000	Hexafluoroethane (CFC-116)	5.5	0	
2903395000	1,1-difluoro ethane (HFC-152a)	5.5	0	
2903396000	1,1,1,2-tetra fluoro ethane (HFC-134a)	5.5	0	
2903397000	1,1,3,3,3-pentafluoro-2-(trifluoromethyl)-1-propene	5.5	0	
2903399000	Other	5.5	0	
2903410000	Trichlorofluoromethane	5.5	0	
2903420000	Dichlorodifluoromethane	5.5	0	
2903430000	Trichlorotrifluoroethanes	5.5	0	
2903441000	Dichlorotetrafluoroethanes (CFC-114)	5.5	0	
2903442000	Chloropentafluoroethane (CFC-115)	5.5	0	
2903451010	Chlorotrifluoromethane (CFC-13)	5.5	0	
2903451090	Other	5.5	0	
2903452010	Pentachlorofluoroethane (CFC-111)	5.5	0	
2903452020	Tetrachlorodifluoroethane (CFC-112)	5.5	0	
2903452090	Other	5.5	0	
2903453010	Heptachlorofluoropropane (CFC-211)	5.5	0	
2903453020	Hexachlorodifluoropropane (CFC-212)	5.5	0	
2903453030	Pentachlorotrifluoropropane (CFC-213)	5.5	0	
2903453040	Tetrachlorotetrafluoropropane (CFC-214)	5.5	0	
2903453050	Trichloropentafluoropropane (CFC-215)	5.5	0	
2903453060	Dichlorohexafluoropropane (CFC-216)	5.5	0	
2903453070	Chloroheptafluoropropane (CFC-217)	5.5	0	
2903453090	Other	5.5	0	
2903461000	Bromochlorodifluoromethane (Halon-1211)	5.5	0	
2903462000	Bromotrifluoromethane (Halon-1301)	5.5	0	
2903463000	Dibromotetrafluoroethane (Halon-2402)	5.5	0	
2903471000	Hydrobromofluorocarbon	5.5	0	
2903479000	Other	5.5	0	
2903491110	Dichlorofluoromethane (HCFC-21)	5.5	0	
2903491120	Chlorodifluoromethane (HCFC-22)	5.5	0	
2903491130	Chlorofluoromethane (HCFC-31)	5.5	0	
2903491190	Other	5.5	0	
2903491210	Dichlorotrifluoroethane (HCFC-123)	5.5	0	
2903491220	Chlorotetrafluoroethane (HCFC-124)	5.5	0	
2903491230	Dichlorofluoroethane (HCFC-141)	5.5	0	
2903491240	Chlorodifluoroethane (HCFC-142)	5.5	0	
2903491290	Other	5.5	0	
2903491310	Dichloropentafluoropropane (HCFC-225)	5.5	0	
2903491390	Other	5.5	0	
2903492000	Derivatives of methane, ethane or propane, halogenated only with fluorine and bromine	5.5	0	
2903499000	Other	5.5	0	
2903510000	1,2,3,4,5,6-Hexachlorocyclohexane (HCH (ISO)), including lindane (ISO, INN)	5.5	0	
2903520000	Aldrin (ISO), chlordane (ISO) and heptachlor (ISO)	5.5	0	
2903590000	Other	5.5	0	
2903611000	Chlorobenzene	5.5	0	
2903619000	Other	5.5	0	
2903621000	Hexachlorobenzene (ISO)	5.5	0	
2903622000	DDT (ISO) (clofenotane (INN), 1,1,1-trichloro-2,2-bis(p-chlorophenyl)ethane)	5.5	0	
2903691000	Benzyl chloride	5.5	0	
2903692010	1,2,4-Trichlorobenzene	5.5	0	
2903692090	Other	5.5	0	
2903693000	Benzotrichloride	5.5	0	
2903699000	Other	5.5	0	
2904101000	Benzene sulphonic acid	5.5	0	
2904109000	Other	5.5	0	
2904201000	Nitrotoluene	5.5	0	
2904209010	Nitrobenzene	5.5	0	
2904209020	4-Nitrobiphenyl and its salts	5.5	0	
2904209090	Other	5.5	0	
2904901000	2,4-dinitrochlorobenzene	5.5	0	
2904902000	p-nitrochlorobenzene	5.5	0	
2904903000	Trichloronitromethane (chloropicrin)	5.5	0	
2904909000	Other	5.5	0	
2905110000	Methanol (methyl alcohol)	2	0	
2905121000	Propan-1-ol (propyl alcohol)	5.5	0	
2905122010	For making semiconductor	5.5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2905122090	Other	5.5	0	
2905130000	Butan-1-ol (n-butyl alcohol)	5	0	
2905140000	Other butanols	5.5	0	
2905161000	2-ethylhexyl alcohol	5.5	0	
2905169000	Other	5.5	0	
2905171000	Dodecan-1-ol (lauryl alcohol)	5.5	0	
2905172000	Hexadecan-1-ol (cetyl alcohol)	5.5	0	
2905173000	Octadecan-1-ol (stearyl alcohol)	5.5	0	
2905191000	Heptyl alcohols	5.5	0	
2905192000	Nonyl acohol	5.5	0	
2905193000	Isononyl alcohol	3	0	
2905194000	Pentanol (amyl alcohol) and isomers thereof	5.5	0	
2905199010	3,3-dimethyl butan-2-ol (pinacolyl alcohol)	5	0	
2905199020	2-Propyl heptyl alcohol	5	0	
2905199030	Isodecyl alcohol	3	0	
2905199090	Other	5	0	
2905221000	Geraniol, citronellol, linalool, rhodinol and nerol	5	0	
2905229000	Other	5	0	
2905290000	Other	5	0	
2905310000	Ethylene glycol (ethanediol)	3	0	
2905320000	Propylene glycol (propane-1,2-diol)	5.5	0	
2905391000	1,4-Butanediol	5.5	0	
2905392000	Neopentyl glycol	5.5	0	
2905399000	Other	5.5	0	
2905410000	2-Ethyl-2-(hydroxymethyl)propane-1,3-diol (trimethylolpropane)	5.5	0	
2905420000	Pentaerythritol	5.5	0	
2905430000	Mannitol	8	7	
2905440000	D-glucitol (sorbitol)	8	7	
2905450000	Glycerol	8	5	
2905490000	Other	5.5	0	
2905510000	Ethchlorvynol (INN)	5.5	0	
2905590000	Other	5.5	0	
2906110000	Menthol	5.5	0	
2906120000	Cyclohexanol, methylcyclohexanols and dimethylcyclohexanols	5.5	0	
2906131000	Sterols	5.5	0	
2906132000	Inositols	5.5	0	
2906191000	Borneol	5.5	0	
2906192000	Terpineols	5.5	0	
2906199000	Other	5.5	0	
2906210000	Benzyl alcohol	5.5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2906291000	Phenylethyl alcohol	5.5	0	
2906292000	Phenylpropyl alcohol	5.5	0	
2906293000	Cinnamyl alcohol	5.5	0	
2906299000	Other	5.5	0	
2907111000	Phenol	5.5	0	
2907112000	Salts of phenol	5.5	0	
2907121000	Cresols	5.5	0	
2907122000	Salts of cresols	5.5	0	
2907131000	Octylphenol	5.5	0	
2907132000	Nonylphenol	5	0	
2907139000	Other	5.5	0	
2907151000	Naphthols	5.5	0	
2907152000	Salts of naphthols	5.5	0	
2907191000	Thymol	5.5	0	
2907192000	Xylenols and their salts	5.5	0	
2907199000	Other	5.5	0	
2907211000	Resorcinol	5.5	0	
2907212000	Salts of resorcinol	5.5	0	
2907221000	Hydroquinone	5.5	0	
2907222000	Salts of hydroquinone	5.5	0	
2907231000	4,4'-Isopropylidenediphenol (bisphenol A)	5.5	0	
2907232000	Salts of 4,4'-isopropylidenediphenol (bisphenol A)	5.5	0	
2907291000	Catechol	5.5	0	
2907299000	Other	5.5	0	
2908110000	Pentachlorophenol (ISO)	5	0	
2908191000	Chlorophenols, excluding pentachlorophenol	5	0	
2908192000	Tetra bromo bisphenol-A	5	0	
2908193000	Tribromophenol	5	0	
2908199000	Other	5	0	
2908910000	Dinoseb (ISO) and its salts	5.5	0	
2908991000	Naphthol sulphonic acids and their salts	5.5	0	
2908992000	Phenol sulphonic acids	5.5	0	
2908993000	Nitrated derivatives and their salts	5.5	0	
2908994000	Nitrosated derivatives and their salts	5.5	0	
2908999000	Other	5.5	0	
2909110000	Diethyl ether	5.5	0	
2909191000	Bis (chloromethyl) ether	5.5	0	
2909192000	Methyl tertiary butyl ether	5.5	0	
2909199000	Other	5.5	0	
2909201000	Cineole	5.5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2909209000	Other	5.5	0	
2909301000	Anisole	5.5	0	
2909302000	Anethole	5.5	0	
2909303000	Diphenylether	5.5	0	
2909304000	Ambrette musk	5.5	0	
2909305000	Decabromodiphenyl oxide	5.5	0	
290930901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09309090	Other	5.5	0	
2909410000	2,2'-Oxydiethanol (diethylene glycol, digol)	5.5	0	
2909430000	Monobutyl ethers of ethylene glycol or of diethylene glycol	5.5	0	
2909441000	Monomethyl ethers of ethylene glycol or of diethylene glycol	5.5	0	
2909449000	Other	5.5	0	
2909491000	Triethylene glycol	5.5	0	
2909499000	Other	5.5	0	
2909501000	Eugenol	5.5	0	
2909502000	Isoeugenol	5.5	0	
2909503000	Ether-alcohol-phenols	5.5	0	
2909509000	Other	5.5	3	
2909601000	Alcohol peroxides	5.5	0	
2909602000	Dicumyl peroxide	5.5	0	
2909603000	Methyl ethyl ketone peroxide	5.5	0	
2909609000	Other	5.5	3	
2910100000	Oxirane (ethylene oxide)	5	0	
2910200000	Methyloxirane (propylene oxide)	5.5	0	
2910300000	1-Chloro-2,3-epoxypropane (epichlorohydrin)	5.5	0	
2910400000	Dieldrin (ISO, INN)	5.5	0	
2910900000	Other	5.5	0	
2911001010	Acetals	5.5	0	
2911001020	Hemiacetals	5.5	0	
2911009000	Other	5.5	0	
2912110000	Methanal (formaldehyde)	5.5	0	
2912120000	Ethanal (acetaldehyde)	5.5	0	
2912191000	Citronellaldehyde	5.5	0	
2912192000	Citral	5.5	0	
2912193000	Butanal (butyraldehyde, normal isomer)	5.5	0	
2912199000	Other	5.5	0	
2912210000	Benzaldehyde	5.5	3	
2912292000	Phenylacetaldehyde	5.5	0	
2912293000	Cinnamaldehyde	5.5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2912294000	Alpha-amylcinnamaldehyde	5.5	0	
2912295000	Cyclamen aldehyde	5.5	0	
2912299000	Other	5.5	3	
2912301000	Hydroxycitronell aldehyde	5.5	0	
2912309000	Other	5.5	0	
2912410000	Vanillin (4-hydroxy-3-methoxybenzaldehyde)	5	0	
2912420000	Ethylvanillin (3-ethoxy-4-hydroxybenzaldehyde)	5.5	0	
2912491000	3,4,5-trimethoxybenz-aldehyde	5.5	0	
2912499000	Other	5.5	0	
2912501000	Trioxan	5.5	0	
2912502000	Paraldehyde	5.5	0	
2912503000	Metaldehyde	5.5	0	
2912509000	Other	5.5	0	
2912600000	Paraformaldehyde	5.5	0	
2913000000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of products of heading 29.12.	5.5	0	
2914110000	Acetone	5.5	0	
2914120000	Butanone (methyl ethyl ketone)	3	0	
2914130000	4-Methylpentan-2-one (methyl isobutyl ketone)	5.5	0	
2914191000	3,3-dimethyl-2-butanone (pinacolone)	5.5	0	
2914199000	Other	5.5	0	
2914210000	Camphor	5	0	
2914221000	Cyclohexanone	5	0	
2914222000	Methylcyclohexanones	5	0	
2914231000	Ionones	5	0	
2914232000	Methylionones	5	0	
2914291000	Jasmone	5	0	
2914299000	Other	5	0	
2914310000	Phenylacetone (phenylpropan-2-one)	5.5	3	
2914390000	Other	5.5	0	
2914401000	Diacetone alcohol (4-Hydroxy-4-methylpentane-2-one)	5.5	0	
2914409000	Other	5.5	0	
2914501000	Ketone-phenols	5.5	0	
2914509000	Other	5.5	0	
2914610000	Anthraquinone	5.5	0	
2914691000	Derivatives of anthraquinone	5.5	0	
2914699010	Qunione-alcohols, quinonephenols, and quinone-aldehydes	5.5	0	
2914699090	Other	5.5	0	
2914701000	Ketone musk	5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291470901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14709090	Other	5	0	
2915110000	Formic acid	5.5	0	
2915121000	Calcium formate	5.5	0	
2915122000	Ammonium formate	5.5	0	
2915129000	Other	5.5	0	
2915131000	Methyl formate	5.5	0	
2915132000	2-ethylhexylchloroformate	5.5	0	
2915139000	Other	5.5	0	
2915210000	Acetic acid	5.5	0	
2915240000	Acetic anhydride	5.5	0	
2915291000	Calcium acetate	5.5	0	
2915292000	Sodium acetate	5.5	0	
2915293000	Cobalt acetate	5.5	0	
2915299000	Other	5.5	0	
2915310000	Ethyl acetate	5.5	0	
2915320000	Vinyl acetate	5.5	0	
2915331000	For making semiconductor	5.5	0	
2915339000	Other	5.5	0	
2915360000	Dinoseb (ISO) acetate	5.5	0	
2915391000	Amyl acetate	5.5	0	
2915392000	Isoamyl acetate	5.5	0	
2915393000	Methyl acetate	5.5	0	
2915394000	Isobutyl acetate	5.5	0	
2915395000	2-Ethoxyethyl acetate	5.5	0	
2915399000	Other	5.5	0	
2915401000	Monochloroacetic acid	5.5	0	
2915409000	Other	5.5	0	
2915500000	Propionic acid, its salts and esters	5.5	5	
2915600000	Butanoic acids, pentanoic acids, their salts and esters	5.5	0	
2915701000	Palmitic acid, its salts and esters	5.5	0	
2915702010	Stearic acid	5.5	3	
2915702020	Magnesium stearate	5.5	5	
2915702030	Lead stearate	5.5	0	
2915702040	Zinc stearate	5.5	0	
2915702050	Barium stearate	5.5	0	
2915702060	Cadmium stearate	5.5	0	
2915702070	Calcium stearate	5.5	5	
2915702080	Butyl stearate	5.5	0	
2915702090	Other	5.5	3	
2915901000	Neodecanoilchloride and pivaloylchloride	5.5	0	
2915909010	2-ethyl hexoic acid	5.5	0	
2915909090	Other	5.5	0	
2916111000	Acrylic acid	6.5	0	
2916119000	Other	6.5	5	
2916121000	Ethyl acrylate	6.5	0	
2916122000	Methyl acrylate	6.5	0	
2916123000	Butyl acrylate	6.5	0	
2916124000	2-ethyl hexyl acrylate	6.5	0	
2916129000	Other	6.5	0	
2916131000	Methacrylic acid	6.5	0	
2916139000	Other	6.5	0	
2916141000	Methyl methacrylate	6.5	0	
2916149000	Other	6.5	5	
2916151000	Oleic acid, its salts and esters	6.5	3	
2916152000	Linoleic acid, its salts and esters	6.5	3	
2916153000	Linolenic acid, its salts and esters	6.5	0	
2916190000	Other	6.5	0	
2916201000	Cyclohexane carboxylic acid	6.5	0	
2916202000	Cyclopentenyl acetic acid	6.5	0	
291620901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16209090	Other	6.5	0	
2916311000	Benzoic acid	6.5	0	
2916312000	Sodium benzoate	6.5	3	
2916313000	Benzyl benzoates	6.5	0	
291631901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16319090	Other	6.5	0	
2916321000	Benzoyl peroxide	6.5	0	
2916322000	Benzoyl chloride	6.5	0	
2916341000	Phenylacetic acid	6.5	0	
2916342000	Salts of phenylacetic acid	6.5	0	
2916351000	Ethyl phenyl acetate	6.5	0	
2916352000	Isobutyl phenyl acetate	6.5	0	
2916353000	Isoamyl phenyl acetate	6.5	0	
2916359000	Other	6.5	0	
2916360000	Binapacryl (ISO)	6.5	0	
2916391000	Cinnamic acid	6.5	0	
291639901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16399090	Other	6.5	5	
2917111000	Oxalic acid	6.5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2917112000	Salts of oxalic acid	6.5	0	
2917113000	Esters of oxalic acid	6.5	0	
2917121000	Adipic acid	6.5	0	
2917122000	Salts of adipic acid	6.5	0	
2917123010	Dioctyl adipate	6.5	0	
2917123090	Other	6.5	0	
2917131000	Azelaic acid, its salts and esters	6.5	0	
2917132000	Sebacic acid, its salts and esters	6.5	3	
2917140000	Maleic anhydride	6.5	0	
2917191000	Maleic acid	6.5	0	
2917192000	Succinic acid	6.5	0	
2917193000	Sodium succinate	6.5	0	
2917194000	Diethyl malonate	6.5	0	
2917195000	Diisopropyl malonate	6.5	0	
2917199000	Other	6.5	0	
2917200000	Cyclanic, cyclenic or cycloterpenic polycarboxylic acids, their anhydrides, halides, peroxides, peroxyacids and their derivatives	6.5	0	
2917321000	Di-2-ethyl hexyl orthophthalate	6.5	0	
2917329000	Other	6.5	0	
2917331000	Dinonyl orthophthalate	6.5	0	
2917332000	Didecyl orthophthalates	6.5	0	
2917341000	Diheptyl orthophthalate	6.5	0	
2917342000	Diisodecyl orthophthalate	6.5	0	
2917343000	Dibutyl orthophthalates	6.5	0	
2917349000	Other	6.5	0	
2917350000	Phthalic anhydride	6.5	0	
2917361000	Terephthalic acid	3	0	
2917369000	Other	6.5	0	
2917370000	Dimethyl terephthalate	6.5	0	
2917391000	Isophthalic acid	6.5	0	
2917392000	Trioctyltrimellitate (T.O.T.M)	6.5	0	
2917393000	Trimellitic anhydride	6.5	0	
2917399000	Other	6.5	0	
2918111000	Lactic acid	6.5	0	
2918112000	Salts of lactic acid	6.5	0	
2918113000	Esters of lactic acid	6.5	0	
2918120000	Tartaric acid	6.5	5	
2918131000	Salts of tartaric acid	6.5	0	
2918132000	Esters of tartaric acid	6.5	0	
2918140000	Citric acid	6.5	3	
2918151010	Calcium citrate	6.5	3	
2918151090	Other	6.5	5	
2918152000	Esters of citric acid	6.5	0	
2918161000	Gluconic acid	6.5	0	
2918162000	Salts of gluconic acid	6.5	0	
2918163000	Esters of gluconic acid	6.5	5	
2918180000	Chlorobenzilate (ISO)	6.5	0	
2918191010	Malic acid	6.5	0	
2918191090	Other	6.5	0	
2918192010	Salts of malic acid	6.5	0	
2918192090	Other	6.5	0	
2918193010	Esters of malic acid	6.5	0	
2918193020	Methyl benzilate	6.5	0	
2918193090	Other	6.5	0	
2918194000	2,2-diphenyl-2-hydroxyacetic acid (benzilic acid)	6.5	0	
2918199000	Other	6.5	5	
2918211000	Salicylic acid	6.5	0	
2918212010	Sodium salicylate	6.5	0	
2918212090	Other	6.5	3	
2918221000	O-acetylsalicylic acid	6.5	0	
2918222000	Salts of o-acetylsalicylic acid	6.5	0	
2918223000	Esters of o-acetylsalicylic acid	6.5	0	
2918231010	Methyl salicylate	6.5	0	
2918231020	Ethyl salicylate	6.5	0	
2918231090	Other	6.5	0	
2918232000	Salts of other esters of salicylic acid	6.5	0	
2918291000	β-oxynaphthoic acid and its salts	6.5	0	
2918299010	Gallic acid	6.5	0	
2918299020	Parahydroxynaphthoic acid	6.5	0	
2918299030	Parahydroxybenzoic acid	6.5	0	
2918299040	Salts and esters of gallic acid	6.5	0	
2918299090	Other	6.5	0	
291830100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18309000	Other	6.5	0	
2918910000	2,4,5-T (ISO) (2,4,5-trichlorophenoxyacetic acid), its salts and esters	6.5	5	
291899100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18999000	Other	6.5	0	
2919100000	Tris(2,3-dibromopropyl) phosphate	6.5	5	
2919901011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19901019	Other	6.5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2919901020	Glycerophosphoric acid	6.5	0	
2919901090	Other	6.5	0	
2919902000	Salts of phosphoric esters	6.5	0	
2919909000	Other	6.5	3	
292011100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20119000	Other	6.5	0	
292019100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20199010	0.0-dimethyl-0-(3-methyl-4-nitrophenyl) thiophosphate	6.5	0	
2920199090	Other	6.5	0	
2920901010	Dimethyl sulfate	6.5	0	
2920901020	Diethyl sulfate	6.5	0	
2920901090	Other	6.5	0	
2920902000	Of nitrous and nitric esters	6.5	0	
2920903000	Of carbonic esters	6.5	0	
2920904010	Dimethyl phosphite	6.5	0	
2920904020	Diethyl phosphite	6.5	0	
2920904030	Trimethyl phosphite	6.5	0	
2920904040	Triethyl phosphite	6.5	0	
292090901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20909090	Other	6.5	0	
2921111010	Methylamine	6.5	0	
2921111020	Salts of methylamine	6.5	0	
2921112010	Dimethylamine	6.5	0	
2921112020	Salts of dimethylamine	6.5	0	
2921113010	Trimethylamine	6.5	0	
2921113020	Salts of trimethylamine	6.5	3	
2921191000	Dimethylaminoethyl chloride hydrochloride	6.5	0	
2921192000	Diethylamine and its salts	6.5	0	
2921199010	Dimethyl laurylamine	6.5	0	
2921199020	Chlormethine (INN) (bis(2-chloroethyl)methylamine)	6.5	0	
2921199030	Bis (2-chloroethyl) ethylamine	6.5	0	
2921199040	Trichlormethine (INN) (tris(2-chloroethyl)amine)	6.5	0	
2921199050	Di-isopropylamine	6.5	0	
2921199060	N,N-diisopropyl-β-aminoethylchloride	6.5	0	
2921199070	N,N-Dialkyl(methyl, ethyl, n-propyl or isopropyl) 2-chloroethylamines and their protonated salts	6.5	0	
2921199090	Other	6.5	5	
2921211000	Ethylenediamine	6.5	0	
2921212000	Salts of ethylenediamine	6.5	0	
2921221000	Hexamethylenediamine	6.5	0	
2921222000	Hexamethylenediamine adipate	6.5	0	
2921229000	Other	6.5	0	
2921291000	Diethylenetriamine	5	0	
2921292000	Triethylene tetramine	5	0	
2921299000	Other	5	0	
2921301000	Cyclohexylamine	6.5	0	
2921309000	Other	6.5	0	
2921411000	Aniline	6.5	0	
2921412000	Salts of aniline	6.5	0	
2921421000	Nitrohalogenated derivatives of aniline	6.5	0	
2921422000	2,4,5-trichloroaniline	6.5	0	
292142901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21429090	Other	6.5	0	
2921431000	Para-toluidine-m-sulfonic acid and its salts	6.5	0	
2921432000	2-chloro-para-toluidine-5-sulfonic acid and its salts	6.5	0	
2921433000	3-amino-6-chlorotoluene-4-sulfonic acid and its salts	6.5	0	
2921439010	Toluidines	6.5	0	
2921439091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21439099	Other	6.5	0	
2921441000	Diphenylamine	6.5	0	
2921449000	Other	6.5	0	
2921451000	1-naphthylamine-4-sulfonic acid and its salts	6.5	0	
2921459010	1-Naphthylamine (alpha-naphthylamine) and its salts	6.5	0	
2921459020	2-Naphthylamine (beta-naphthylamine) and its salts	6.5	0	
2921459030	2-naphthylamine-3,6,8-trisulfonic acid and its salts	5	0	
2921459090	Other	6.5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2921460000	Amfetamine (INN), benzfetamine (INN), dexamfetamine (INN), etilamfetamine (INN), fencamfamin (INN), lefetamine (INN), levamfetamine (INN), mefenorex (INN) and phentermine (INN); salts thereof	6.5	0	
292149100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21499000	Other	6.5	5	
2921511000	N-Phenyl-N'-isopropyl-para-phenylenediamine	6.5	0	
2921512000	N-(1,3-Dimethyl butyl)-N'-phenyl-para-phenylenediamine	6.5	3	
2921519010	o-phenylene diamine	6.5	0	
2921519020	m-phenylene diamine	6.5	0	
2921519030	p-phenylene diamine	6.5	0	
2921519040	Diaminotoluenes	6.5	0	
2921519090	Other	6.5	3	
2921591000	3,3-Dichloro benzidine sulfonic acid salts	6.5	0	
2921599010	Benzidine	6.5	0	
2921599020	Benzidine dihydrochloride	6.5	0	
2921599030	4,4'diaminostilbene-2,2'-disulfonic acid and its salts	6.5	0	
2921599040	Benzidine's salts other than benzidine dihydrochloride	6.5	0	
2921599050	o-Tolidine and its salts	6.5	0	
2921599090	Other	6.5	0	
2922111000	Monoethanolamine	6.5	0	
2922112000	Salts of monoethanolamine	6.5	0	
2922121000	Diethanolamine	6.5	0	
2922122000	Salts of diethanolamine	6.5	0	
2922131000	Triethanolamine	3	0	
2922132000	Salts of triethanolamine	6.5	0	
2922140000	Dextropropoxyphene (INN) and its salts	6.5	0	
2922191000	Arylethanolamines	6.5	0	
2922193010	N,N-Dimethyl-2 aminoethanol and its protonated salts	6.5	0	
2922193020	N,N-Diethyl-2-aminoethanol and its protonated salts	6.5	0	
2922193090	Other	6.5	0	
2922194000	Ethyldiethanolamine	6.5	0	
2922195000	Methyldiethanolamine	6.5	0	
2922196000	Diethylaminoethanol	6.5	0	
2922199000	Other	6.5	0	
2922211000	7-amino-1-naphthol-3-sulphonic acid (gamma acid) and its salts	6.5	0	
2922212000	8-amino-1-naphthol-3, 6-disulphonic acid (H acid) and its salts	3	0	
2922213000	2-amino-5-naphthol-7-disulphonic acid (J acid) and its salts	6.5	0	
2922219000	Other	6.5	0	
2922291000	Para-aminophenol	6.5	0	
2922299010	Meta-aminophenol	6.5	0	
2922299020	Ortho-aminophenol	6.5	0	
2922299030	Amino cresols	6.5	0	
2922299040	Phenetidines and their salts	6.5	0	
2922299090	Other	6.5	0	
2922310000	Amfepramone (INN), methadone (INN) and normethadone (INN); salts thereof	6.5	0	
2922392000	Amino anthraquinons and their salts	6.5	0	
2922393000	Derivatives of amino anthraquinons	6.5	0	
2922399000	Other	6.5	0	
2922411000	Lysine	6.5	0	
2922412000	Esters of lysine	6.5	0	
2922413000	Salts of lysine and its esters	6.5	5	
2922421000	Glutamic acid	5	0	
2922422000	Sodium glutamate	6.5	0	
2922423000	Other salts of glutamic acid	6.5	0	
2922431000	Anthranilic acid	6.5	0	
2922439000	Salts of anthranilic acid	6.5	0	
2922440000	Tilidine (INN) and its salts	6.5	0	
2922491000	Glycine	6.5	5	
2922492000	Alanine	6.5	0	
2922493000	Leucine	6.5	0	
2922494000	Valine	6.5	0	
2922495000	Aspartic acid	6.5	5	
2922496000	Phenylglycine	6.5	0	
2922497000	Ethyl para amino benzoate	6.5	0	
2922499000	Other	6.5	0	
2922501000	Serine	6.5	0	
2922502000	Para-amino salicylic acid and its salts	6.5	0	
2922503000	1-p-nitrophenol-2-amino-1,3-propane diol	6.5	0	
2922504000	Dialphahydroxyphenylglycine	6.5	0	
292250901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2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Chemicals Management Act)			
2922509090	Other	6.5	0	
2923101000	Choline	6.5	0	
2923102000	Salts of choline	6.5	0	
2923201000	Lecithins	6.5	0	
2923202000	Other phosphoaminolipids	6.5	0	
2923900000	Other	6.5	3	
2924110000	Meprobamate (INN)	6.5	0	
2924121000	Fluoroacetamide (ISO)	6.5	0	
2924122000	Monocrotophos (ISO)	6.5	0	
2924123000	Phosphamidon (ISO)	6.5	0	
2924191000	Dimethylformamide	6.5	0	
2924192000	Dimethylacetamide	6.5	0	
292419901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24199090	Other	6.5	0	
292421100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24219000	Other	6.5	3	
2924230000	2-Acetamidobenzoic acid (N-acetylanthranilic acid) and its salts	6.5	0	
2924240000	Ethinamate (INN)	6.5	0	
2924291010	Aminoacetanilide and its derivatives	6.5	0	
2924291020	Acetaminophen	6.5	5	
2924291090	Other	6.5	0	
2924292000	Aceto acetanilide and its derivatives	5	0	
2924299010	Lidocaine hydrochloride	6.5	0	
2924299091	Iopromide, Iopamidol and Iomeprol	0	0	
2924299092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24299099	Other	6.5	3	
2925111000	Saccharin	6.5	0	
2925112000	Salts of saccharin	6.5	0	
2925120000	Glutethimide (INN)	6.5	0	
2925191000	Phthalimide	6.5	0	
292519901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25199090	Other	6.5	0	
2925210000	Chlordimeform (ISO)	6.5	0	
2925291000	Diphenyl guanidine	6.5	0	
292529901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25299090	Other	6.5	0	
2926100000	Acrylonitrile	6.5	0	
2926200000	1-Cyanoguanidine (dicyandiamide)	6.5	0	
2926300000	Fenproporex (INN) and its salts; methadone (INN) intermediate (4-cyano-2-dimethylamino-4,4-diphenylbutane)	6.5	0	
2926901000	Acetonitrile	6.5	0	
2926902000	1,4-diamino-2,3-dicyanoanthraquinon	6.5	0	
2926909010	Malono nitrile	6.5	0	
2926909091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26909099	Other	6.5	0	
2927001100	6-nitro-1-diazo-2-naphthol-4-sulfonic acid	6.5	0	
2927001900	Other	6.5	0	
2927002100	Azodicarbonamide	6.5	0	
2927002910	Azoisobutyronitrile	6.5	0	
2927002990	Other	6.5	0	
2927003000	Azoxy-compounds	6.5	0	
2928001000	Phenylhydrazine	6.5	0	
2928009010	Perillartine	6.5	0	
2928009020	Methylethyl ketoxime	6.5	0	
2928009091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28009099	Other	6.5	3	
2929101000	Toluene diisocyanate	6.5	0	
2929102000	Diphenyl methane diisocyanate	6.5	0	
2929109000	Other	6.5	0	
2929901000	Isocyanides	6.5	0	
2929903000	Dialkyl (methyl, ethyl, n-propyl or isopropyl) N,N-dialkyl (methyl, ethyl, n-propyl or isopropyl) phosphoramidates	6.5	0	
2929904000	Diethyl-n,n-dimethylphosphoramidates	6.5	0	
2929905000	o-ethyl-2-diisopropylaminoethyl methylphosphonite	6.5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2929906000	N,N-Dialkyl (methyl, ethyl, n-propyl or isopropyl) phosphoramidic dihalides	6.5	0	
2929909000	Other	6.5	0	
293020101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30201090	Other	6.5	3	
293020201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30202090	Other	6.5	0	
2930301000	Thiuram mono-sulphides	6.5	0	
2930302000	Thiuram di-sulphides	6.5	0	
2930303000	Thiuram tetra-sulphides	6.5	0	
2930400000	Methionine	6.5	0	
2930501000	Captafol (ISO)	6.5	0	
2930502000	Methamidophos (ISO)	6.5	0	
2930901000	Sodium-2-amino-4-methylthiobutylate	6.5	0	
2930902010	Thiourea	6.5	0	
2930902020	Thiocarbanilide	6.5	0	
2930902091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30902099	Other	6.5	0	
2930903010	Thioalcohols	6.5	0	
2930903020	Thiophenols	6.5	0	
2930903030	N,N-Diisopropyl-β-aminoethanthiol	6.5	0	
2930903040	N,N-Dialkyl (methyl, ethyl, n-propyl or isopropyl) aminoethane-2-thiols and their protonated salts	6.5	0	
2930904010	Thiodiglycol (INN) (bis(2-hydroxyethyl)sulphide)	6.5	3	
2930904020	Thioaniline	6.5	0	
2930904090	Other	6.5	0	
2930905010	2-Chloroethylchloromethylsulphide	6.5	0	
2930905020	Bis (2-chloroethyl) sulphide	6.5	0	
2930905030	Bis (2-chloroethylthio) methane	6.5	0	
2930905040	1,2-Bis (2-chloroethylthio) ethane	6.5	0	
2930905050	1,3-Bis (2-chloroethylthio)-n-propane	6.5	0	
2930905060	1,4-Bis (2-chloroethylthio)-n-butane	6.5	0	
2930905070	1,5-Bis (2-chloroethylthio)-n-pentane	6.5	0	
2930905081	Bis(2-chloroethylthiomethyl)ether	6.5	0	
2930905082	Bis(2-chloroethylthioethyl)ether	6.5	0	
2930905090	Other	6.5	0	
2930906000	[S-2-(dialkyl (methyl, ethyl, n-propyl or isopropyl)amino) ethyl] hydrogen alkyl (methyl, ethyl, n-propyl or isopropyl)phosphonothioates and their O-alkyl (≤C10, including cycloalkyl) esters; alkylated or protonated salts thereof	6.5	0	
2930907000	O,O-Diethyl s-[2-(diethylamino) ethyl] phosphorothioate and its alkylated or protonated salts	6.5	0	
2930908000	O-Ehtyl, S-phenyl ethylphosphonothiolothionate (fonofos)	6.5	0	
2930909010	Thioacids	6.5	0	
2930909020	Isothiocyanates	6.5	0	
2930909030	Cysteine	6.5	3	
2930909040	Cystine	6.5	3	
2930909050	Glutathion	6.5	3	
2930909060	8-Chloro-6-tosylotinic acid ethyl ester	6.5	0	
2930909070	Containing a phosphorus atom to which is bonded one methyl, ethyl, n-propyl or isopropyl group but not further carbon atoms	6.5	0	
2930909080	Dithiocarbonates (xanthates)	6.5	0	
2930909091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30909099	Other	6.5	5	
2931002010	2-Chlorovinyldichloroarsine	6.5	0	
2931002020	Bis (2-chlorovinyl) chloroarsine	6.5	0	
2931002030	Tris (2-chlorovinyl) arsine	6.5	0	
2931002091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31002099	Other	6.5	0	
2931003100	[O-2-(dialkyl(methyl,ethyl, n-propyl or isopropyl)amino)ethyl]hydrogen alkyl (methyl,ethyl, n-propyl or isopropyl) phosphonites and their O-alkyl (≤C10, including	6.5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cycloalkyl)esters; alkylated or protonated salts thereof			
2931003300	O-Isopropyl methylphosphonochloridate	6.5	0	
2931003400	O-Pinacolyl methylphosphonochloridate	6.5	0	
2931003500	O-Alkyl (≤C10,including cycloalkyl) alkyl (methyl, ethyl, n-propyl or isopropyl) phosphonofluoridates	6.5	0	
2931003700	O-Alkyl (≤C10,including cycloalkyl) N,N-dialkyl (methyl, ethyl, n-propyl or isopropyl) phosphoramidocyanidates	6.5	0	
2931003911	Dimethyl methylphosphonate	6.5	0	
2931003912	Diethyl ethylphosphonate	6.5	0	
2931003913	Diethyl methylphosphonate	6.5	0	
2931003914	Dimethyl ethylphosphonate	6.5	0	
2931003915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31003919	Others	6.5	3	
2931004010	Alkyl (methyl, ethyl, n-propyl or isopropyl)phosphonyl difluorides	6.5	0	
2931004090	Other	6.5	0	
2931005010	Methyl phosphonyl dichloride	6.5	0	
2931005020	Methyl phosphinyl dichloride	6.5	0	
2931005030	Ethyl phosphonyl dichloride	6.5	0	
2931005040	Ethyl phosphinyl dichloride	6.5	0	
2931005090	Other	6.5	0	
2931009010	Dibutyl tin oxide	6.5	0	
2931009020	Diethyl aluminium chloride	6.5	0	
2931009091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31009099	Other	6.5	3	
2932110000	Tetrahydrofuran	6.5	0	
2932120000	2-Furaldehyde (furfuraldehyde)	6.5	0	
2932131000	Furfuryl alcohol	6.5	0	
2932132000	Tetrahydrofurfuryl alcohol	6.5	0	
293219100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32199000	Other	6.5	0	
2932211000	Coumarin	5	0	
2932212000	Methylcoumarins	5	0	
2932213000	Ethylcoumarins	5	0	
2932291000	Nonalactone	5	0	
2932292000	Undecalactone	5	0	
2932293000	Butyrolactone	5	0	
2932294000	Santonin	5	0	
2932295000	Phenolphthalein	5	0	
2932296000	Glucuronolactone	5	0	
2932297000	Dehydracetic acid and its salts	5	0	
2932298000	Acetyl ketene (diketene)	5	0	
293229901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32299090	Other	5	0	
2932910000	Isosafrole	6.5	0	
2932920000	1-(1,3-Benzodioxol-5-yl)propane-2-one	6.5	0	
2932930000	Piperonal	6.5	0	
2932940000	Safrole	6.5	0	
2932950000	Tetrahydrocannabinols (all isomers)	6.5	0	
2932991000	Dioxanes	6.5	0	
2932992000	Benzofuran (coumarone)	6.5	0	
293299901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32999090	Other	6.5	5	
2933111000	Methylene bis(1-phenyl-2,3-dimethyl-4-methylamino pyra zolone-5)	6.5	0	
2933119010	Phenazone (antipyrin)	6.5	0	
2933119030	Sulpyrine	6.5	0	
2933119040	Isopropyl antipyrin	6.5	0	
2933119091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33119099	Other	6.5	0	
2933191000	Pyrazolone and its derivatives	6.5	0	
2933199010	Phenyl butazone	6.5	0	
2933199020	Pyrazolate	6.5	0	
2933199091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2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Chemicals Management Act)			
2933199099	Other	6.5	5	
2933211000	Hydantoin	6.5	0	
2933212000	Derivatives of hydantoin	6.5	0	
2933291000	Lysidine	6.5	0	
293329901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33299090	Other	6.5	5	
2933311000	Pyridine	6.5	5	
2933312000	Salts of pyridine	6.5	0	
2933321000	Piperidine	6.5	3	
2933329000	Salts of piperidine	6.5	0	
2933330000	Alfentanil (INN), anileridine (INN), bezitramide (INN), bromazepam (INN), difenoxin (INN), diphenoxylate (INN) dipipanone (INN), fentanyl (INN), ketobemidone (INN), methylphenidate (INN), pentazocine (INN), pethidine (INN), pethidine (INN) intermediate A, phencyclidine (INN) (PCP), phenoperidine (INN), pipradrol (INN), piritramide (INN), propiram (INN) and trimeperidine (INN); salts thereof	6.5	0	
2933391000	Isonicotinic acid hydrazide	6.5	0	
2933393000	3-Hydroxy-1-methylpiperidine	6.5	0	
2933394000	3-Quinuclidinyl benzilate	6.5	0	
2933395000	Quinuclidin-3-ol	6.5	0	
293339901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33399090	Other	6.5	0	
2933410000	Levorphanol (INN) and its salts	6.5	0	
2933491000	Pyrvinium pamoate	6.5	0	
293349901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33499090	Other	6.5	0	
2933520000	Malonylurea (barbituric acid) and its salts	6.5	0	
2933530000	Allobarbital (INN), amobarbital (INN), barbital (INN), butalbital (INN), butobarbital, cyclobarbital (INN), methylphenobarbital (INN), pentobarbital (INN), phenobarbital (INN), secbutabarbital (INN), secobarbital (INN) and vinylbital (INN); salts thereof	6.5	0	
2933540000	Other derivatives of malonylurea (barbituric acid); salts thereof	6.5	0	
2933550000	Loprazolam (INN), mecloqualone (INN), methaqualone (INN) and zipeprol (INN); salts thereof	6.5	0	
2933591100	5-fluorouracil	6.5	0	
2933591910	Pyrimidine	6.5	0	
2933591991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33591999	Other	6.5	0	
2933592010	Piperazine	6.5	0	
2933592020	Piperazine citrate	6.5	0	
2933592030	Piperazine adipate	6.5	0	
2933592040	1-amino-4-methylpiperazine	6.5	0	
2933592090	Other	6.5	5	
2933599000	Other	6.5	0	
2933610000	Melamine	6.5	3	
2933691000	Cyanuric chloride	3	0	
2933692000	Hexamethylene tetramine	6.5	0	
2933699010	Trimethylene trinitramine	6.5	0	
2933699091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33699099	Other	6.5	0	
2933710000	6-Hexanelactam (epsilon-caprolactam)	3	0	
2933720000	Clobazam (INN) and methyprylon (INN)	6.5	0	
2933791000	Isatin	6.5	0	
2933792000	2-hydroxyquinoline	6.5	0	
2933793000	1-vinyl-2-pyrrolidone	6.5	0	
2933799000	Other	6.5	5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2933910000	Alprazolam (INN), camazepam (INN), chlordiazepoxide (INN), clonazepam (INN), clorazepate, delorazepam (INN), diazepam (INN), estazolam (INN), ethyl loflazepate (INN), fludiazepam (INN), flunitrazepam (INN), flurazepam (INN), halazepam (INN), lorazepam (INN), lormetazepam (INN), mazindol (INN), medazepam (INN), midazolam(INN), nimetazepam (INN), nitrazepam (INN), nordazepam (INN), oxazepam (INN), pinazepam (INN), prazepam (INN), pyrovalerone (INN), temazepam (INN) tetrazepam (INN) and triazolam (INN); salts thereof	6.5	0	
2933991000	Indole and its derivatives	6.5	0	
293399901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33999090	Other	6.5	0	
2934101000	Aminothiazole and its derivative	6.5	0	
293410901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34109090	Other	6.5	0	
2934201000	Benzothiazole	6.5	0	
2934202000	Mercaptobenzothiazole	6.5	0	
2934203000	Dibenzothiazolyl disulphide	6.5	0	
293420901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34209090	Other	6.5	0	
2934301000	Phenothiazine (thiodiphenyl amine)	6.5	0	
2934309000	Other	6.5	0	
2934910000	Aminorex (INN), brotizolam (INN), clotiazepam (INN), cloxazolam (INN), dextromoramide (INN), haloxazolam (INN), ketazolam (INN), mesocarb (INN), oxazolam (INN), pemoline (INN), phendimetrazine (INN), phenmetrazine (INN) and sufentanil (INN); salts thereof	6.5	0	
2934991000	Morpholine	6.5	0	
2934992000	Nucleic acids, their salts and derivatives	6.5	0	
2934993000	7-Aminocephalosporanic acid	6.5	3	
293499901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34999090	Other	6.5	3	
2935002000	5-amino-2-methyl-n-phenyl benzene sulfonamide	6.5	0	
2935003000	Para-toluidine-3-sulfon anilide	6.5	0	
2935004000	2-amino-n-ethylbenzene sulfonanilide	6.5	0	
2935006000	Sulfamethoxazole	6.5	0	
2935007000	Sulfamethoxine	6.5	0	
2935008010	Sulphamine	6.5	0	
2935008020	Sulphapyridine	6.5	0	
2935008030	Sulphadiazine	6.5	0	
2935008040	Sulphamerazine	6.5	0	
2935008050	Sulphathiazole	6.5	0	
2935008090	Other	6.5	0	
293500902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35009090	Other	6.5	3	
2936210000	Vitamins A and their derivatives	6.5	3	
2936220000	Vitamin B1 and its derivatives	6.5	3	
2936230000	Vitamin B2 and its derivatives	6.5	0	
2936240000	D- or DL-Pantothenic acid (Vitamin B3 or Vitamin B5) and its derivatives	6.5	3	
2936250000	Vitamin B6 and its derivatives	6.5	3	
2936260000	Vitamin B12 and its derivatives	6.5	3	
2936271000	Ascorbic acid	6.5	3	
2936272000	Sodium ascorbate	6.5	3	
2936273000	Calcium ascorbate	6.5	3	
2936279000	Other	6.5	3	
2936281000	Alpha-tocopherol acetate	6.5	3	
2936289000	Other	6.5	3	
2936291010	Vitamin B9	6.5	3	
2936291090	Other	6.5	3	
2936292000	Vitamins D and their derivatives	6.5	3	
2936293000	Vitamin H and its derivatives	6.5	3	
2936294000	Vitamins K and their derivatives	6.5	3	
2936295000	Nicotinamide and its derivatives	6.5	3	
2936299000	Other	6.5	3	
2936901000	Provitamins, unmixed	6.5	3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2936909000	Other	6.5	3	
2937111000	Of subheading 2933.9 or 2934.9	6.5	0	
2937119000	Other	0	0	
2937120000	Insulin and its salts	0	0	
2937191000	Of subheading 2933.9 or 2934.9	6.5	0	
2937199000	Other	0	0	
2937211000	Cortisone	0	0	
2937212000	Hydrocortisone	0	0	
2937213000	Prednisone	0	0	
2937214000	Prednisolone	0	0	
2937220000	Halogenated derivatives of corticosteroidal hormones	0	0	
2937230000	Oestrogens and progestogens	0	0	
2937292000	Of subheading 2914.50	5.5	0	
2937299000	Other	0	0	
2937310000	Epinephrine	0	0	
2937391000	Of subheading 2922.50	6.5	0	
2937399000	Other	0	0	
2937400000	Amino-acid derivatives	0	0	
2937501000	Of subheading 2918.19 or 2918.9	6.5	0	
2937502000	Of subheading 2934.9	6.5	0	
2937509000	Other	0	0	
2937901000	Of subheading 2933.9 or 2934.9	6.5	0	
2937909000	Other	0	0	
2938101000	Rutoside (rutin)	6.5	0	
2938102000	Derivatives of rutoside	6.5	0	
2938901000	Digitalis glycosides	6.5	0	
2938902000	Glycyrrhizin and glycyrrhizates	6.5	3	
2938903000	Saponins	6.5	3	
2938904000	Stevioside	6.5	0	
2938909000	Other	6.5	5	
2939111000	Morphine	0	0	
2939112000	Ethylmorphine	0	0	
2939113000	Codeine	0	0	
2939114000	Concentrates of poppy straw containing not less than 50 % by weight of alkaloids	8	0	
2939119000	Other	0	0	
2939190000	Other	0	0	
2939200000	Alkaloids of cinchona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0	0	
2939300000	Caffeine and its salts	0	0	
2939411000	Ephedrines	0	0	
2939419000	Salts of ephedrines	0	0	
2939421000	Pseudoephedrine (INN)	0	0	
2939429000	Salts of pseudoephedrine	0	0	
2939430000	Cathine (INN) and its salts	0	0	
2939491000	Norephedrin	0	0	
2939499000	Other	0	0	
2939510000	Fenetylline (INN) and its salts	0	0	
2939590000	Other	0	0	
2939611000	Ergometrine (INN)	0	0	
2939619000	Salts of ergometrine (INN)	0	0	
2939621000	Ergotamin (INN)	0	0	
2939629000	Salts of ergotamin (INN)	0	0	
2939631000	Lysergic acid	0	0	
2939639000	Salts of lysergic acid	0	0	
2939690000	Other	0	0	
2939910000	Cocaine, ecgonine, levometamfetamine, metamfetamine (INN), metamfetamine racemate; salts, esters and other derivatives thereof	0	0	
2939991000	Atropine and homatropine	0	0	
2939992000	Arecoline	0	0	
2939993000	Piperine	0	0	
2939994000	Nicotine and its salts	0	0	
2939999000	Other	0	0	
2940001010	Galactose	6.5	0	
2940001020	Sorbose	6.5	0	
2940001030	Xylose	6.5	3	
2940001090	Other	6.5	3	
2940002010	Hydroxypropyl sucrose	6.5	0	
2940002090	Other	6.5	3	
2941101000	Penicilline G potassium	6.5	0	
2941109010	Penicilline G sodium	6.5	0	
2941109020	Penicilline V	6.5	0	
2941109090	Other	6.5	5	
294120100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41209000	Other	6.5	0	
2941301000	Chlorotetracycline	6.5	0	
2941302000	Oxy-tetracycline hydrochloride	6.5	0	
2941303000	Chlorotetracycline hydrochloride	6.5	0	
2941309000	Other	6.5	3	
2941400000	Chloramphenicol and its derivatives; salts thereof	6.5	3	
2941501000	Erythromycin thiocyanate	6.5	3	
2941509000	Other	6.5	3	
2941902000	11-alpha-chloro-6-deoxy-6-demethyl-6-methylene-5-oxytetracycline-paratoluene sulfonate	6.5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2941909010	Kanamycine sulfate	6.5	3	
2941909020	Ledermycine	6.5	0	
2941909030	Gentamycine sulfate	6.5	0	
2941909040	Leucomycin	6.5	3	
2941909091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2941909099	Other	6.5	0	
2942001000	Ketenes	6.5	0	
2942009010	Copper acetoarsenite	6.5	0	
2942009090	Other	6.5	3	
3001201000	Gland extracts	0	0	
3001202000	Liver extracts	0	0	
3001203000	Gall bag extracts	0	0	
3001204000	Pancreas extracts	0	0	
3001205000	Stomach extracts	0	0	
3001209000	Other	0	0	
3001901010	Of human body	0	0	
3001901090	Other	0	0	
3001902010	Bear's gall	0	0	
3001902090	Other	0	0	
3001909010	Heparin and its salts	0	0	
3001909020	Of human body	0	0	
3001909090	Other	0	0	
3002101000	Preparations of blood fractions and put up in packings as medicaments	0	0	
3002102010	Haemoglobin	0	0	
3002102020	Globulins	0	0	
3002103000	Thrombin and prothrombinase	0	0	
3002109010	Antisera	0	0	
3002109020	Serums and blood plasma (excluding reproduced by synthesis)	0	0	
3002109090	Other	0	0	
3002200000	Vaccines for human medicine	0	0	
3002301000	Vaccines against foot and mouth disease	0	0	
3002309000	Other	0	0	
3002901000	Human blood	0	0	
3002902000	Animal blood (prepared for therapeutic, prophylactic or diagnostic uses)	0	0	
3002903010	Saxitoxin	6.5	0	
3002903020	Ricin	8	0	
3002903090	Other	0	0	
3002904000	Microbial culture	0	0	
3002905000	Virus and anti-virus	0	0	
3002906000	Bacteriophage	0	0	
3002909000	Other	0	0	
3003101000	Containing penicillines or derivatives thereof, with a penicillanic acid structure	8	0	
3003102000	Containing streptomycins or their derivatives	8	0	
3003201000	Anti-tuberculosis preparations and anti-cancer preparations	8	3	
3003209010	Preparations containing chloramphenicol	8	0	
3003209090	Other	8	3	
3003310000	Containing insulin	8	0	
3003391010	Preparations containing pituitary (anterior) hormones	8	0	
3003391020	Preparations containing pituitary (posterior) hormones	8	0	
3003392000	Preparations containing salivary gland hormones	8	0	
3003393000	Preparations containing thyroid and parathyroid hormones	8	0	
3003394000	Preparations containing anabolic steroids	8	0	
3003395000	Preparations containing adrenal cortical hormones	8	0	
3003396000	Preparations containing adrenal medulla hormones	8	0	
3003397000	Preparations containing male sex hormones	8	0	
3003398000	Preparations containing estrogens and gestagens, progestins	8	0	
3003399000	Other	8	3	
3003401000	Anti-cancer preparations	8	0	
3003409110	Preparations containing morphine	8	0	
3003409120	Preparations containing quinine	8	0	
3003409130	Preparations containing theobromine	8	0	
3003409210	Preparations containing caffeine	8	0	
3003409220	Preparations containing strychnine	8	0	
3003409230	Preparations containing ephedrine	8	0	
3003409310	Preparations containing cocaine	8	0	
3003409320	Preparations containing alkaloids of rye ergot	8	0	
3003409330	Preparations containing nicotine	8	0	
3003409400	Preparations containing atropine and homatropine	8	0	
3003409500	Preparations containing arecoline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3003409600	Preparations containing piperine	8	0	
3003409900	Other	8	0	
3003901000	Anti-tuberculosis preparations anthelmintic preparations and anticancer preparations	8	3	
3003909100	Preparations containing aspirin	8	0	
3003909200	Preparations containing anti-allergic agents	8	0	
3003909300	Preparations containing vitamins	8	0	
3003909400	Preparations containing antler	8	0	
3003909500	Preparations containing ginseng	8	0	
3003909600	Preparations containing royal jelly	8	0	
3003909900	Other	8	0	
3004101000	Containing penicillins or derivatives thereof, with a penicillanic acid structure	8	0	
3004102000	Containing streptomycins or their derivatives	8	3	
3004201000	Anti-tuberculosis preparations, anthelmintic preparations and anti-cancer preparations	8	3	
3004209100	Preparations containing chloramphenicol	8	0	
3004209200	Preparations containing erythromycin	8	0	
3004209300	Preparations containing oxy-tetracycline	8	3	
3004209400	Preparations containing kanamycin	8	0	
3004209900	Other	8	3	
3004310000	Containing insulin	8	0	
3004320000	Containing corticosteroid hormones, their derivatives or structural analogues	8	3	
3004391010	Preparations containing pituitary (anterior) hormones	8	3	
3004391020	Preparations containing pituitary (posterior) hormones	8	0	
3004392000	Preparations containing salivary gland hormones	8	0	
3004393000	Preparations containing thyroid and parathyroid hormones	8	0	
3004394000	Preparations containing anabolic steroids	8	0	
3004395000	Preparations containing adrenal medulla hormones	8	0	
3004396000	Preparations containing male sex hormones	8	0	
3004397000	Preparations containing estrogens and gestagens, progestins	8	0	
3004399000	Other	8	3	
3004401000	Anti-cancer preparations	8	3	
3004409110	Preparations containing morphine	8	0	
3004409120	Preparations containing quinine	8	0	
3004409130	Preparations containing theobromine	8	0	
3004409210	Preparations containing caffeine	8	0	
3004409220	Preparations containing strychnine	8	0	
3004409230	Preparations containing ephedrine	8	0	
3004409310	Preparations containing cocaine	8	0	
3004409320	Preparations containing alkaloids of rye ergot	8	0	
3004409330	Preparations containing nicotine	8	0	
3004409400	Preparations containing atropine and homatropine	8	0	
3004409500	Preparations containing arecoline	8	0	
3004409600	Preparations containing piperine	8	0	
3004409900	Other	8	3	
3004501000	Preparations containing vitamin A	8	0	
3004502010	Preparations containing vitamin B1	8	0	
3004502090	Other	8	3	
3004503000	Preparations containing vitamin C	8	0	
3004504000	Preparations containing vitamin D	8	0	
3004505000	Preparations containing vitamin E	8	0	
3004506000	Preparations containing vitamin H	8	0	
3004507000	Preparations containing vitamin K	8	0	
3004509000	Other	8	3	
3004901000	Anti-tuberculosis preparations, anthelmintic preparations and anti-cancer preparations	8	3	
3004909100	Preparations containing aspirin	8	0	
3004909200	Preparations containing anti-allergic agents	8	0	
3004909300	Preparations containing antler	8	0	
3004909400	Preparations containing ginseng	8	0	
3004909500	Preparations containing royal jelly	8	0	
3004909900	Other	8	3	
3005101000	Adhesive plasters	0	0	
3005109000	Other	0	0	
3005901000	Waddings	0	0	
3005902000	Gauze	0	0	
3005903000	Bandages	0	0	
3005904000	Prepared dressings and poultices	0	0	
3005909000	Other	0	0	
3006101010	Sterile surgical catgut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3006101020	Sterile suture materials (including sterile absorbable surgical or dental yarns)	0	0	
3006102000	Sterile tissue adhesives for surgical wound closure	0	0	
3006103000	Sterile laminaria and sterile laminaria tents	0	0	
3006104000	Sterile absorbable surgical or dental haemostatics	0	0	
3006105010	Of plastics	6.5	5	
3006105020	Of knitted or crocheted fabrics	8	0	
3006105090	Other	0	0	
3006200000	Blood-grouping reagents	0	0	
3006301000	Opacifying preparations for x-ray examination	0	0	
3006302000	Diagnostic reagents (designed to be administered to the patient)	0	0	
3006401000	Dental cements	0	0	
3006402000	Dental fillings	0	0	
3006403000	Bone reconstruction cements	0	0	
3006500000	First-aid boxes and kits	0	0	
3006600000	Chemical contraceptive preparations based on hormones, on other products of heading 29.37 or on spermicides	0	0	
3006700000	Gel preparations designed to be used in human or veterinary medicine as a lubricant for parts of the body for surgical operations or physical examinations or as a coupling agent between the body and medical instruments	6.5	3	
3006910000	Appliances identifiable for ostomy use	6.5	0	
3006921010	Skin and bone grafts	0	0	
3006921090	Other	0	0	
3006922010	Preparations of blood fractions and put up in packings as medicaments	0	0	
3006922020	Haemoglobin and globulins	0	0	
3006922031	Saxitoxin	6.5	0	
3006922032	Ricin	8	0	
3006922090	Other	0	0	
3006923000	Of heading 30.03 or 30.04	8	0	
3006924000	Of heading 30.05 or 30.06	0	0	
3006925000	Of subheading 3824.90	6.5	0	
3101001010	Guano	6.5	0	
3101001090	Other	6.5	0	
3101002000	Vegetable fertilisers	6.5	3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3101003000	Fertilisers produced by the mixing or chemical treatment of animal or vegetable products	6.5	0	
3102101000	Agricultural fertilizers or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fertilizers	2	0	
3102109000	Other	6.5	0	
3102210000	Ammonium sulphate	6.5	0	
3102291000	Double salts of ammonium sulphate and ammonium nitrate	6.5	0	
3102292000	Mixtures of ammonium sulphate and ammonium nitrate	6.5	0	
3102300000	Ammonium nitrate, whether or not in aqueous solution	6.5	0	
3102400000	Mixtures of ammonium nitrate with calcium carbonate or other inorganic non-fertilising substances	6.5	0	
3102501000	Natural	6.5	0	
3102509000	Other	6.5	0	
3102600000	Double salts and mixtures of calcium nitrate and ammonium nitrate	6.5	0	
3102800000	Mixtures of urea and ammonium nitrate in aqueous or ammoniacal solution	6.5	0	
3102901000	Double salts of calcium nitrate and magnesium nitrate	6.5	0	
3102909000	Other	6.5	0	
3103100000	Superphosphates	6.5	0	
3103901000	Disintegrated (calcined) calcium phosphates	6.5	0	
3103902000	Calcium hydrogenorthophosphate containing not less than 0.2 % by weight of fluorine	6.5	0	
3103903000	Other calcium phosphate	6.5	0	
3103904000	Mixtures of phosphatic fertilisers	6.5	0	
3103909000	Other	6.5	0	
3104200000	Potassium chloride	0	0	
3104301000	Not more than 52 % by weight of K2O	1	0	
3104309000	Other	6.5	0	
3104901010	Not more than 30 % by weight of K2O	1	0	
3104901090	Other	6.5	0	
3104909000	Other	1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3105100000	Goods of this Chapter in tablets or similar forms or in packages of a gross weight not exceeding 10 kg	6.5	3	
3105200000	Mineral or chemical fertilisers containing the three fertilising elements nitrogen, phosphorus and potassium	6.5	3	
3105300000	Diammonium hydrogenorthophosphate (diammonium phosphate)	6.5	0	
3105400000	Ammonium dihydrogenorthophosphate (monoammonium phosphate) and mixtures thereof with diammonium hydrogenorthophosphate (diammonium phosphate)	6.5	0	
3105510000	Containing nitrates and phosphates	6.5	0	
3105590000	Other	6.5	3	
3105600000	Mineral or chemical fertilisers containing the two fertilising elements phosphorus and potassium	6.5	0	
3105901000	Fertilisers containing nitrogen and potassium	6.5	3	
3105909000	Other	6.5	3	
3201100000	Quebracho extract	6.5	0	
3201200000	Wattle extract	6.5	0	
3201901010	Extracts from mangrove	6.5	0	
3201901020	Extracts from myrobolans	6.5	0	
3201901030	Extracts from sumach	6.5	0	
3201901040	Extracts from gambier	6.5	0	
3201901090	Other	6.5	0	
3201902000	Tannins (tannic acids) and their salts	6.5	0	
3201903000	Ethers or esters of tannins	6.5	0	
3201904000	Other derivatives of tannins	6.5	0	
3202101000	Aromatic syntans	6.5	0	
3202102000	Alkylsulphonylchlorides	6.5	0	
3202103000	Resinic tanning products	6.5	0	
3202109000	Other	6.5	0	
3202901000	Inorganic tanning products	6.5	0	
3202902000	Artificial bates	6.5	0	
3202909000	Other	6.5	3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3203001100	Natural indigo	6.5	0	
3203001910	Logwood	6.5	0	
3203001920	Sandal wood	6.5	0	
3203001930	Chlorophyll	6.5	0	
3203001990	Other	6.5	3	
3203002010	Cochineal	6.5	0	
3203002020	Kermes	6.5	0	
3203002030	Sepia	6.5	0	
3203002090	Other	6.5	0	
3203003000	Preparations based on colouring matter of vegetable or animal origin	6.5	3	
3204111000	Preparations based on disperse dyes (press cake)	4	3	
3204119000	Other	8	0	
3204121000	Acid dyes and preparations based thereon	8	0	
3204122000	Mordant dyes and preparations based thereon	8	0	
3204130000	Basic dyes and preparations based thereon	8	3	
3204140000	Direct dyes and preparations based thereon	8	3	
3204150000	Vat dyes (including those usable in that state as pigments) and preparations based thereon	8	0	
3204160000	Reactive dyes and preparations based thereon	8	3	
3204170000	Pigments and preparations based thereon	8	3	
3204191000	Organic solvent dyes and preparations based thereon	8	0	
3204192000	Rapid dyes and preparations based thereon	8	0	
3204193000	Sulphide dyes and sulphide vat dyes and preparations based thereon	8	0	
3204199000	Other	8	0	
3204200000	Synthetic organic products of a kind used as fluorescent brightening agents	6.5	0	
3204901000	Synthetic organic products of the kind used as luminophores	6.5	0	
3204909000	Other	6.5	3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3205001000	Pigment plastic colour bases	6.5	0	
3205009000	Other	6.5	3	
3206110000	Containing 80 % or more by weight of titanium dioxide calculated on the dry matter	6.5	0	
3206190000	Other	6.5	3	
3206200000	Pigments and preparations based on chromium compounds	6.5	0	
3206411000	Ultramarine	6.5	0	
3206419000	Other	6.5	0	
3206421000	Lithopones	6.5	0	
3206429000	Other	6.5	0	
3206491000	Zinc grey	6.5	0	
3206492000	Mineral black	6.5	0	
3206493000	Coloured earths	6.5	0	
3206494000	Soluble vandyke brown	6.5	0	
3206495000	Pigments based on cobalt compounds	6.5	0	
3206496000	Pigments and preparations based on cadmium compounds	6.5	0	
3206499000	Other	6.5	3	
3206500000	Inorganic products of a kind used as luminophores	6.5	0	
3207100000	Prepared pigments, prepared opacifiers, prepared colours and similar preparations	6.5	3	
3207201000	Vitrifiable enamels and glazes	6.5	3	
3207202000	Engobes (slips)	6.5	0	
3207209000	Other	6.5	3	
3207301000	Of gold	6.5	0	
3207302000	Of platinum	6.5	0	
3207303000	Of palladium	6.5	0	
3207304000	Of silver	6.5	0	
3207309000	Other	6.5	3	
3207400000	Glass frit and other glass, in the form of powder, granules or flakes	6.5	0	
3208101010	Enamels	6.5	0	
3208101090	Other	6.5	3	
3208102000	Varnishes (including lacquers)	6.5	3	
3208103000	Solutions as defined in Note 4 to this Chapter	6.5	0	
3208201011	Enamels	6.5	0	
3208201019	Other	6.5	3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3208201020	Varnishes (including lacquers)	6.5	3	
3208201030	Solutions as defined in Note 4 to this Chapter	6.5	3	
3208202011	Enamels	6.5	0	
3208202019	Other	6.5	0	
3208202020	Varnishes (including lacquers)	6.5	0	
3208202030	Solutions as defined in Note 4 to this Chapter	6.5	0	
3208901011	Enamels	6.5	3	
3208901019	Other	6.5	0	
3208901020	Varnishes (including lacquers)	6.5	0	
3208901030	Solutions as defined in Note 4 to this Chapter	6.5	0	
3208909011	Enamels	6.5	3	
3208909019	Other	6.5	3	
3208909020	Varnishes (including lacquers)	6.5	3	
3208909030	Solutions as defined in Note 4 to this Chapter	6.5	3	
3209101011	Enamels	6.5	3	
3209101019	Other	6.5	3	
3209101020	Varnishes (including lacquers)	6.5	0	
3209102010	Paints (including enamels)	6.5	0	
3209102020	Varnishes (including lacquers)	6.5	0	
3209901011	Enamels	6.5	3	
3209901019	Other	6.5	3	
3209901020	Varnishes (including lacquers)	6.5	3	
3209909011	Enamels	6.5	0	
3209909019	Other	6.5	3	
3209909020	Varnishes (including lacquers)	6.5	0	
3210001011	Enamels	6.5	3	
3210001019	Other	6.5	0	
3210001091	Enamels	6.5	0	
3210001099	Other	6.5	3	
3210002010	Oil varnishes	6.5	0	
3210002020	Varnishes and lacquers based on lac, natural gum or resins	6.5	0	
3210002030	Varnishes based on bitumen,pitch or similar products	6.5	0	
3210002040	Liquid varnishes containing no solvent	6.5	0	
3210003010	Distempers	6.5	0	
3210003090	Other	6.5	3	
3211000000	Prepared driers	6.5	3	
3212100000	Stamping foils	6.5	3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3212901000	Dyes and other colouring matter put up in forms or packings for retail sale	6.5	3	
3212909000	Other	6.5	3	
3213101000	Oil colours	6.5	0	
3213102000	Water colours	6.5	0	
3213109000	Other	6.5	0	
3213901000	Oil colours	6.5	3	
3213902000	Water colours	6.5	3	
3213909000	Other	6.5	3	
3214101060	Based on rubber	6.5	0	
3214101080	Resin mastics and cements	6.5	3	
3214101090	Other	6.5	3	
3214102000	Painters' fillings	6.5	0	
3214109000	Other	6.5	3	
3214900000	Other	6.5	3	
3215110000	Black	6.5	3	
3215190000	Other	6.5	3	
3215901000	Writing ink	6.5	0	
3215902000	Drawing ink	6.5	0	
3215903000	Copying ink	6.5	0	
3215904010	Of oil	6.5	0	
3215904020	Of water	6.5	0	
3215904030	Of oil and water	6.5	0	
3215905000	Metalic ink	6.5	0	
3215906010	Of oil	6.5	0	
3215906020	Of water	6.5	0	
3215906030	Of oil and water	6.5	0	
3215909000	Other	6.5	3	
3301120000	Of orange	5	5	
3301130000	Of lemon	5	5	
3301190000	Other	5	5	
3301240000	Of peppermint (Mentha piperita)	5	5	
3301250000	Of other mints	5	5	
3301291000	Vanilla oil	5	5	
3301292000	Citronella oil	5	5	
3301293000	Cinnamon bark oil	5	5	
3301294000	Cinnamon leaf oil	5	5	
3301299000	Other	5	5	
3301300000	Resinoids	8	7	
3301901000	Terpenic by-products of the deterpenation of essential oils	8	7	
3301902000	Concentrates of essential oils	8	7	
3301903000	Aqueous distillates and aqueous solutions of essential oils	8	7	
3301904100	Of opium	8	7	
3301904200	Of liquorice	8	7	
3301904300	Of hops	30	7	
3301904400	Of pyrethrum or of the roots of plants containing rotenone	8	7	
3301904510	Of white ginseng	20	15	
3301904520	Of red ginseng	754.3	15	
3301904530	Of other ginseng	20	15	
3301904600	Of cashew nut shell liquid	8	3	
3301904700	Of natural lacquer	8	3	
3301904800	Other	8	3	
3302101000	Of a kind used in the food industries	6.5	0	
3302102011	Compound alcoholic preparations	30	10	
3302102019	Other	8	10	
3302102090	Other	6.5	0	
3302900000	Other	6.5	3	
3303001000	Perfumes and scents	6.5	5	
3303002000	Toilet waters	6.5	5	
3304101000	Lipsticks	6.5	5	
3304109000	Other	6.5	5	
3304201000	Eye shadows	6.5	0	
3304209000	Other	6.5	0	
3304301000	Nail enamels	6.5	0	
3304309000	Other	6.5	0	
3304911000	Face powders	6.5	3	
3304912000	Baby powders (including talcum powder)	6.5	0	
3304919000	Other	6.5	3	
3304991000	Skin care cosmetics	6.5	5	
3304992000	Make-up cosmetics	6.5	3	
3304993000	Baby cosmetics	6.5	5	
3304999000	Other	6.5	3	
3305100000	Shampoos	6.5	5	
3305200000	Preparations for permanent waving or straightening	6.5	5	
3305300000	Hair lacquers	6.5	3	
3305901000	Hair rinses	6.5	5	
3305902000	Hair creams	6.5	3	
3305909000	Other	6.5	3	
3306100000	Dentifrices	6.5	3	
3306201011	Not more than 70 decitex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3306201019	Other	8	0	
3306201020	Of measuring per single yarn more than 50 tex	8	0	
3306209000	Other	8	0	
3306901000	Preparation for oral hygiene	6.5	5	
3306902000	Preparations for dental hygiene	6.5	3	
3307101000	After-shaving lotions	6.5	5	
3307109000	Other	6.5	3	
3307200000	Personal deodorants and antiperspirants	6.5	5	
3307301000	Perfumed bath salts	6.5	0	
3307302000	Other bath preparations	6.5	5	
3307410000	"Agarbatti" and other odoriferous preparations which operate by burning	6.5	0	
3307490000	Other	6.5	3	
3307901000	Depilatories	6.5	5	
3307902000	Scented sachets	6.5	3	
3307903000	Contact lens solutions or artificial eye solutions	6.5	5	
3307909000	Other	6.5	0	
3401111000	Medicated soaps	6.5	0	
3401119000	Other	6.5	3	
3401191010	Laundry soaps	6.5	0	
3401191090	Other	6.5	3	
3401192000	Paper, wadding, felt and nonwovens, impregnated, coated or covered with soap or detergent	6.5	3	
3401200000	Soap in other forms	6.5	5	
3401300000	Organic surface-active products and 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in the form of liquid or cream and put up for retail sale, whether or not containing soap	6.5	3	
3402110000	Anionic	8	3	
3402120000	Cationic	8	0	
340213100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3402139000	Other	8	3	
3402190000	Other	8	3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3402201000	Washing preparations	6.5	3	
3402202000	Cleaning preparations	6.5	3	
3402209000	Other	6.5	3	
3402901000	Surface-active preparations	6.5	3	
3402902000	Washing preparations	6.5	3	
3402903000	Cleaning preparations	6.5	3	
3403111000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textile materials	6.5	0	
3403112000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leather or furskins	6.5	3	
3403119000	Other	6.5	0	
3403191000	Cutting oil preparations	6.5	0	
3403192000	Bolt or nut release preparations	6.5	0	
3403193000	Anti-rust or anti-corrosion preparations	6.5	3	
3403194000	Mold release preparations	6.5	0	
3403195000	Lubricating preparations used in wire-drawing	6.5	3	
3403199000	Other	6.5	3	
3403911000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textile materials	6.5	0	
3403912000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leather or furskins	6.5	0	
3403919000	Other	6.5	0	
3403991000	Cutting oil preparations	6.5	0	
3403992000	Lubricating preparations used in wire-drawing	6.5	3	
3403999000	Other	6.5	3	
3404200000	Of poly(oxyethylene) (polyethylene glycol)	6.5	0	
3404901010	Of chloroparaffines	6.5	0	
3404901020	Of opals	6.5	0	
3404901030	Of polyalkylenes	6.5	0	
3404901040	Of chemically modified lignite	6.5	0	
3404901090	Other	6.5	3	
3404902000	Prepared waxes	6.5	3	
3405100000	Polishes, creams and similar preparations for footwear or leather	6.5	3	
3405200000	Polishes, creams and similar prepar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wooden furniture, floors or other woodwork	6.5	3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3405300000	Polishes and similar preparations for coachwork, other than metal polishes	6.5	3	
3405400000	Scouring pastes and powders and other scouring preparations	6.5	0	
3405901010	Based on chalk	6.5	0	
3405901020	Based on kieselguhr	6.5	0	
3405901030	Based on diamond powder or dust	6.5	0	
3405901090	Other	6.5	3	
3405909000	Other	6.5	3	
3406000000	Candles, tapers and the like	6.5	3	
3407001000	Modelling pastes	6.5	3	
3407002000	Preparations known as "dental wax" or as "dental impression compounds"	6.5	0	
3407003000	Other preparations for use in dentistry, with a basis of plaster	6.5	0	
3501101000	For manufacturing coffee creamer	8	12	
3501109000	Other	20	12	
3501901110	For manufacturing coffee creamer	8	10	
3501901190	Other	20	12	
3501901200	Other casein derivatives	20	12	
3501902000	Casein glues	20	12	
3502110000	Dried	8	10	
3502190000	Other	8	10	
3502200000	Milk albumin, including concentrates of two or more whey proteins	8	10	
3502901000	Albuminates and other albumin derivatives	8	5	
3502909000	Other	8	5	
3503001010	Gelatin	8	7	
3503001020	Gelatin derivatives	8	5	
3503002000	Isinglass	8	3	
3503003000	Other glues of animal origin	8	3	
3504001010	Peptones	8	10	
3504001020	Derivatives of peptones	8	3	
3504002010	Keratins	8	3	
3504002020	Nucleoproteids	8	3	
3504002030	Protein isolates	8	3	
3504002090	Other	8	3	
3504003000	Hide powder	8	0	
3505101000	Dextrins	8	7	
3505102000	Soluble starch (amylogen)	8	10	
3505103000	Roasted starches	385.7	10	
3505104010	For food	385.7	15	
3505104090	Other	385.7	15	
3505105010	For food	385.7	15	
3505105090	Other	385.7	15	
3505109010	For food	385.7	10	
3505109090	Other	385.7	10	
3505201000	Starch glues	201.2	10	
3505202000	Dextrin glues	201.2	10	
3505209000	Other	201.2	10	
3506101000	Based on rubber	6.5	3	
3506102000	Based on plastic (including artificial resins)	6.5	0	
3506109000	Other	6.5	3	
3506910000	Adhesives based on polymers of headings 39.01 to 39.13 or on rubber	6.5	3	
3506991000	Vienna glues	6.5	0	
3506992000	Glues obtained by chemically treating natural gums	6.5	0	
3506993000	Glues based on silicates	6.5	3	
3506999000	Other	6.5	3	
3507100000	Rennet and concentrates thereof	6.5	3	
3507901010	Trypsin	6.5	0	
3507901020	Chymotrypsin	6.5	0	
3507901030	Alpha-amylase	6.5	0	
3507901040	Lipase	6.5	0	
3507901090	Other	6.5	0	
3507902000	Pepsin	6.5	0	
3507903000	Malt enzymes	6.5	0	
3507904010	Papain	6.5	0	
3507904020	Bromelain	6.5	0	
3507904030	Ficin	6.5	0	
3507906010	Amylase	6.5	0	
3507906020	Protease	6.5	0	
3507907000	Pectic enzymes	6.5	0	
3507908000	Cytochrome C oxidase	6.5	0	
3507909000	Other	6.5	0	
3601001000	Black powders	6.5	0	
3601002000	Smokeless powders	6.5	0	
3602000000	Prepared explosives, other than propellent powders.	6.5	3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3603001000	Safety fuses	6.5	0	
3603002000	Detonating fuses	6.5	0	
3603003000	Percussion or detonating caps	6.5	0	
3603004000	Igniters	6.5	3	
3603005000	Electric detonators	6.5	0	
3604100000	Fireworks	6.5	0	
3604901000	Signalling flares	6.5	0	
3604909000	Other	6.5	0	
3605001000	Yellow phosphorus match	6.5	0	
3605009000	Other	6.5	0	
3606100000	Liquid or liquefied-gas fuels in containers of a kind used for filling or refilling cigarette or similar lighters and of a capacity not exceeding 300 ㎤	6.5	0	
3606901010	Meta fuel	6.5	0	
3606901020	Hexamine	6.5	0	
3606901030	Solidified alcohols	6.5	0	
3606901090	Other	6.5	0	
3606902010	Lighter flints	6.5	0	
3606902090	Other	6.5	0	
3606909010	Lighter flints	6.5	3	
3606909090	Other	6.5	0	
3701100000	For X-ray	6.5	0	
3701200000	Instant print film	6.5	0	
3701301000	For making semiconductor	6.5	0	
3701309100	For graphic art	6.5	3	
3701309200	For printed circuit board	6.5	0	
3701309910	For astronomy	6.5	0	
3701309920	For aerial photography	6.5	0	
3701309991	For Flat Panel Display (blank mask)	3	0	
3701309999	Other	6.5	0	
3701911000	For making semiconductor	6.5	0	
3701919100	For graphic art	6.5	0	
3701919200	For printed circuit board	6.5	0	
3701919910	For astronomy	6.5	0	
3701919920	For aerial photography	6.5	0	
3701919990	Other	6.5	0	
3701991000	For making semiconductor	3	0	
3701999100	For graphic art	6.5	0	
3701999200	For printed circuit board	6.5	0	
3701999910	For astronomy	6.5	0	
3701999920	For aerial photography	6.5	0	
3701999990	Other	6.5	3	
3702100000	For X-ray	6.5	0	
3702311110	Negatives	6.5	0	
3702311120	Positives	6.5	0	
3702311210	Negatives	6.5	0	
3702311220	Positives	6.5	0	
3702311910	Negatives	6.5	0	
3702311920	Positives	6.5	0	
3702312000	For graphic art	6.5	0	
3702313000	For printed circuit board	6.5	0	
3702319010	For photo-electric sound recording	6.5	0	
3702319020	For aerial photography	6.5	0	
3702319090	Other	6.5	0	
3702321110	Negatives	6.5	0	
3702321120	Positives	6.5	0	
3702321210	Negatives	6.5	0	
3702321220	Positives	6.5	0	
3702321910	Negatives	6.5	0	
3702321920	Positives	6.5	0	
3702322000	For graphic art	6.5	0	
3702323000	For printed circuit board	6.5	0	
3702329010	For photo-electric sound recording	6.5	0	
3702329020	For aerial photography	6.5	0	
3702329030	Instant print film	6.5	0	
3702329090	Other	6.5	0	
3702391110	Negatives	6.5	0	
3702391120	Positives	6.5	0	
3702391210	Negatives	6.5	0	
3702391220	Positives	6.5	0	
3702391910	Negatives	6.5	0	
3702391920	Positives	6.5	0	
3702392000	For graphic art	6.5	0	
3702393000	For printed circuit board	6.5	0	
3702399010	For photo-electric sound recording	6.5	0	
3702399020	For aerial photography	6.5	0	
3702399090	Other	6.5	0	
3702411010	Negatives	6.5	0	
3702411020	Positives	6.5	0	
3702412000	For graphic art	6.5	0	
3702413000	For printed circuit board	6.5	0	
3702419010	For photo-electric sound recording	6.5	0	
3702419020	For aerial photography	6.5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3702419090	Other	6.5	0	
3702421010	Negatives	6.5	0	
3702421020	Positives	6.5	0	
3702422000	For graphic art	6.5	0	
3702423000	For printed circuit board	6.5	0	
3702429010	For photo-electric sound recording	6.5	0	
3702429020	For aerial photography	6.5	0	
3702429090	Other	6.5	0	
3702431010	Negatives	6.5	0	
3702431020	Positives	6.5	0	
3702432000	For graphic art	6.5	0	
3702433000	For printed circuit board	6.5	0	
3702439010	For photo-electric sound recording	6.5	0	
3702439020	For aerial photography	6.5	0	
3702439090	Other	6.5	0	
3702441010	Negatives	6.5	0	
3702441020	Positives	6.5	0	
3702442000	For graphic art	6.5	0	
3702443000	For printed circuit board	6.5	0	
3702449010	For photo-electric sound recording	6.5	0	
3702449020	For aerial photography	6.5	0	
3702449090	Other	6.5	0	
3702511010	Negatives	6.5	0	
3702511020	Positives	6.5	0	
3702512000	For graphic art	6.5	0	
3702513000	For printed circuit board	6.5	0	
3702519010	For photo-electric sound recording	6.5	0	
3702519020	For aerial photography	6.5	0	
3702519090	Other	6.5	0	
3702521010	Negatives	6.5	0	
3702521020	Positives	6.5	0	
3702522000	For graphic art	6.5	0	
3702523000	For printed circuit board	6.5	0	
3702529010	For photo-electric sound recording	6.5	0	
3702529020	For aerial photography	6.5	0	
3702529090	Other	6.5	0	
3702530000	Of a width exceeding 16 ㎜ but not exceeding 35 ㎜ and of a length not exceeding 30 m, for slides	6.5	0	
3702541010	Negatives	6.5	0	
3702541020	Positives	6.5	0	
3702542000	For graphic art	6.5	0	
3702543000	For printed circuit board	6.5	0	
3702549010	For photo-electric sound recording	6.5	0	
3702549020	For aerial photography	6.5	0	
3702549090	Other	6.5	0	
3702551010	Negatives	6.5	0	
3702551020	Positives	6.5	0	
3702552000	For graphic art	6.5	0	
3702553000	For printed circuit board	6.5	0	
3702559010	For photo-electric sound recording	6.5	0	
3702559020	For aerial photography	6.5	0	
3702559090	Other	6.5	0	
3702561010	Negatives	6.5	0	
3702561020	Positives	6.5	0	
3702562000	For graphic art	6.5	0	
3702563000	For printed circuit board	6.5	0	
3702569010	For photo-electric sound recording	6.5	0	
3702569020	For aerial photography	6.5	0	
3702569090	Other	6.5	0	
3702911010	Negatives	6.5	0	
3702911020	Positives	6.5	0	
3702912000	For graphic art	6.5	0	
3702913000	For printed circuit board	6.5	0	
3702919010	For photo-electric sound recording	6.5	0	
3702919020	For aerial photography	6.5	0	
3702919090	Other	6.5	0	
3702931010	Negatives	6.5	0	
3702931020	Positives	6.5	0	
3702932000	For graphic art	6.5	0	
3702933000	For printed circuit board	6.5	0	
3702939010	For photo-electric sound recording	6.5	0	
3702939020	For aerial photography	6.5	0	
3702939090	Other	6.5	0	
3702941010	Negatives	6.5	0	
3702941020	Positives	6.5	0	
3702942000	For graphic art	6.5	0	
3702943000	For printed circuit board	6.5	0	
3702949010	For photo-electric sound recording	6.5	0	
3702949020	For aerial photography	6.5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3702949090	Other	6.5	0	
3702951010	Negatives	6.5	0	
3702951020	Positives	6.5	0	
3702952000	For graphic art	6.5	0	
3702953000	For printed circuit board	6.5	0	
3702959010	For photo-electric sound recording	6.5	0	
3702959020	For aerial photography	6.5	0	
3702959090	Other	6.5	0	
3703101010	For x-ray	6.5	0	
3703101020	For electro-cardiograph	6.5	0	
3703101030	For photo-copying	6.5	0	
3703101040	For recording	6.5	0	
3703101090	Other	6.5	0	
3703109010	For x-ray	6.5	0	
3703109020	For electro-cardiograph	6.5	0	
3703109030	For photo-copying	6.5	0	
3703109040	For recording	6.5	0	
3703109090	Other	6.5	0	
3703201000	For x-ray	6.5	0	
3703202000	For electro-cardiograph	6.5	0	
3703203000	For photo-copying	6.5	0	
3703204000	For recording	6.5	0	
3703209000	Other	6.5	0	
3703901000	For x-ray	6.5	0	
3703902000	For electro-cardiograph	6.5	0	
3703903000	For photo-copying	6.5	0	
3703904000	For recording	6.5	0	
3703909000	Other	6.5	0	
3704001110	For news	0	0	
3704001120	Cinematographic film exposed overseas in the working of a motion picture by a republic of Korea producer (only Republic of Korea actors appearing in film)	0	0	
3704001190	Other	0	0	
3704001200	For offset reproduction, producing postcard, illustrated postcard, cards and calendars	0	0	
3704001300	For making semiconductor	0	0	
3704001900	Other	0	0	
3704002000	Photographic paper, paperboard and textiles	6.5	0	
3705101000	For producing postcard, illustrated postcard, cards and calendars	6.5	3	
3705109000	Other	0	0	
3705901000	For making semiconductor	3	0	
3705902010	X-ray pictured	0	0	
3705902020	Books copied	0	0	
3705902030	Document copied	0	0	
3705903000	Microfilms	0	0	
3705909010	For academic research	0	0	
3705909020	For astronomy	0	0	
3705909030	For aerial photography	0	0	
3705909090	Other	0	0	
3706101000	Consisting only of sound track	195won/m or 6.5	0	
3706102000	For news	4won/m or 6.5	0	
3706103010	Rush	26won/m or 6.5	0	
3706103020	Other negative joint-produced cinematography	468won/m or 6.5	0	
3706103030	Other positive joint-produced cinematography	78won/m or 6.5	0	
3706104000	Cinematograph film exposed overseas in the working of a motion picture by a republic of Korea producer (only pictured overseas scenery or only appeared actors of Republic of Korea in the film) and cinematograph film made by a Korean producer in Korea	26won/m or 6.5	3	
3706105010	Negatives	1,092won/m or 6.5	0	
3706105020	Positives	182won/m or 6.5	3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3706106010	Negatives	1,560won/m or 6.5	0	
3706106020	Positives	260won/m or 6.5	0	
3706901000	Consisting only of sound track	9won/m or 6.5	0	
3706902000	For news	5won/m or 6.5	0	
3706903010	Rush	26won/m or 6.5	0	
3706903020	Other negative joint-produced cinematography	468won/m or 6.5	0	
3706903030	Other positive joint-produced cinematography	78won/m or 6.5	0	
3706904000	Cinematograph film exposed overseas in the working of a motion picture by a republic of Korea producer (only pictured overseas scenery or only appeared actors of Republic of Korea in the film) and cinmatograph film made by a Korean producer in Korea	26won/m or 6.5	0	
3706905010	Negatives	25won/m or 6.5	0	
3706905020	Positives	8won/m or 6.5	0	
3706906010	Negatives	1,092won/m or 6.5	0	
3706906020	Positives	182won/m or 6.5	0	
3707100000	Sensitising emulsions	6.5	0	
3707901010	For making semiconductor	6.5	0	
3707901090	Other	6.5	0	
3707902100	For colour photography	6.5	0	
3707902910	For X-ray	6.5	0	
3707902920	For graphic art	6.5	0	
3707902990	Other	6.5	0	
3707903100	For colour photography	6.5	0	
3707903910	For X-ray	6.5	0	
3707903920	For graphic art	6.5	0	
3707903990	Other	6.5	0	
3707909100	Intensifiers and reducers	6.5	0	
3707909200	Toners	6.5	3	
3707909300	Clearing agents	6.5	0	
3707909400	Flash light materials	6.5	0	
3707909900	Other	6.5	0	
3801101000	For manufacturing secondary battery	4	0	
3801109000	Other	6.5	3	
3801200000	Colloidal or semi-colloidal graphite	6.5	0	
3801300000	Carbonaceous pastes for electrodes and similar pastes for furnace linings	6.5	0	
3801900000	Other	6.5	3	
3802100000	Activated carbon	6.5	3	
3802901010	Activated diatomite	6.5	0	
3802901020	Activated clays and activated earths	6.5	3	
3802901090	Other	6.5	3	
3802902000	Animal black (including spent animal black)	6.5	0	
3803000000	Tall oil, whether or not refined.	5	0	
3804001000	Liquid	6.5	0	
3804009000	Other	6.5	0	
3805101000	Gum spirits of turpentine	6.5	0	
3805102000	Wood turpentine	6.5	0	
3805103000	Sulphate turpentine	6.5	0	
3805900000	Other	6.5	0	
3806101000	Rosin	6.5	7	
3806102000	Resin acids	6.5	0	
3806201000	Salts of rosin	6.5	0	
3806202000	Salts of resin acids	6.5	0	
3806209000	Other	6.5	0	
3806300000	Ester gums	6.5	0	
3806902000	Run gum	6.5	0	
3806903000	Rosin spirit and rosin oil	6.5	0	
3806909000	Other	6.5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3807001000	Wood tar, wood tar oils and wood creosote	6.5	0	
3807002000	Wood naphtha	6.5	0	
3807003000	Vegetable pitch	6.5	0	
3807009010	Pyroligneous liquid	6.5	7	
3807009090	Other	6.5	0	
380850100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3808509000	Other	6.5	5	
380891100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3808919000	Other	6.5	5	
380892100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3808929000	Other	6.5	5	
3808931000	Herbicides	6.5	5	
3808932000	Anti-sprouting products	6.5	0	
3808933000	Plant-growth regulators	6.5	3	
3808940000	Disinfectants	6.5	3	
3808991000	Rodenticides	6.5	0	
3808999000	Other	6.5	3	
3809100000	With a basis of amylaceous substances	8	10	
3809910000	Of a kind used in the textile or like industries	6.5	3	
3809920000	Of a kind used in the paper or like industries	6.5	0	
3809930000	Of a kind used in the leather or like industries	6.5	3	
3810101000	Pickling preparations for metal surfaces	6.5	3	
3810109000	Other	6.5	3	
3810901000	Fluxes and other auxiliary preparations for soldering, brazing or welding	6.5	3	
3810909000	Other	6.5	0	
3811110000	Based on lead compounds	6.5	0	
3811190000	Other	6.5	3	
3811210000	Containing petroleum oils or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5	3	
3811290000	Other	5	3	
3811900000	Other	6.5	3	
3812101000	Based on diphenylguanidine	6.5	0	
3812102000	Based on dithiocarbamates	6.5	0	
3812103000	Based on thiuram sulphides	6.5	0	
3812104000	Based on hexamethylene tetramine	6.5	0	
3812105000	Based on mercaptobenzothiazole	6.5	0	
3812106000	Based on dibenzothiazyle disulphide	6.5	0	
3812109000	Other	6.5	0	
3812200000	Compound plasticisers for rubber or plastics	6.5	0	
3812301000	Anti-oxidising preparations	6.5	0	
3812302000	Other compound stabilisers	6.5	3	
3813001000	Preparations for fire-extinguishers	6.5	3	
3813002000	Charges for fire-extinguishers	6.5	0	
3813003000	Charged fire-extinguishing grenades	6.5	0	
3814001010	Mixtures of acetones, methyl acetate and methanol	6.5	0	
3814001020	Mixtures of ethyl acetate, butyl alcohol and toluene	6.5	3	
3814001090	Other	6.5	3	
3814002110	For making semiconductor	6.5	0	
3814002190	Other	6.5	0	
3814002900	Other	6.5	3	
3815110000	With nickel or nickel compounds as the active substance	6.5	0	
3815121000	With platinium metal or platinium compounds	6.5	0	
3815122000	Of palladium or palladium compounds	6.5	0	
3815129000	Other	6.5	3	
3815191000	With iron or iron compounds as the active substance	6.5	0	
3815192000	Of titanium or titanium compounds	6.5	3	
3815199000	Other	6.5	3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3815901000	Reaction initiators	6.5	0	
3815909000	Other	6.5	3	
3816001000	Refractory cements	6.5	3	
3816002000	Refractory mortars	6.5	3	
3816003000	Refractory concretes	6.5	0	
3816009000	Other	6.5	0	
3817000000	Mixed alkylbenzenes and mixed alkylnaphthalene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2707 or 2902	6.5	0	
3818001000	Chemical elements doped for use in electronics	0	0	
3818002000	Chemical compounds doped for use in electronics	0	0	
3819001000	Hydraulic brake fluids	6.5	0	
3819002000	Other prepared liquids for hydraulic transmission	6.5	3	
3820001000	Anti-freezing preparations	6.5	0	
3820002000	Prepared de-icing fluids	6.5	0	
3821000000	Prepared culture media for the development or maintenance of micro-organisms (including viruses and the like) or of plant, human or animal cells	6.5	3	
3822001011	Of other plates, sheets, film, foil and strip of plastics	0	0	
3822001012	Other articles of plastics	0	0	
3822001013	Paper, paperboard, cellulose wadding or webs of cellulose fibres, in rolls or sheets referred to in Note 8 to Chapter 48	0	0	
3822001014	Litumuth testing paper and other similar testing paper	0	0	
3822001019	Other	0	0	
3822001020	Prepared, not on a backing	0	0	
3822001091	Of other plates, sheets, film, foil and strip of plastics	6.5	0	
3822001092	Other articles of plastics	6.5	0	
3822001093	Paper, paperboard, cellulose wadding or webs of cellulose fibres, in rolls or sheets referred to in Note 8 to Chapter 48	0	0	
3822001099	Other	8	3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3822002011	Of other plates, sheets, film, foil and strip of plastics	0	0	
3822002012	Other articles of plastics	0	0	
3822002013	Paper,paperboard, cellulose wadding or webs of cellulose fibres, in rolls or sheets referred to in Note 8 to Chapter 48	0	0	
3822002014	Litumuth testing paper and other similar testing paper	0	0	
3822002019	Other	0	0	
3822002020	Prepared, not on a backing	0	0	
3822002091	Of other plates, sheets, film, foil and strip of plastics	6.5	3	
3822002092	Other articles of plastics	6.5	0	
3822002093	Paper, paperboard, cellulose wadding or webs of cellulose fibres, in rolls or sheets referred to in Note 8 to Chapter 48	0	0	
3822002099	Other	8	5	
3822003041	Of 0 % rate in the Tariff Schedules	0	0	
3822003042	Of 1 % rate in the Tariff Schedules	1	0	
3822003043	Of 2 % rate in the Tariff Schedules	2	0	
3822003044	Of 3 % rate in the Tariff Schedules	3	0	
3822003045	Of 4 % rate in the Tariff Schedules	4	0	
3822003046	Of 5 % rate in the Tariff Schedules	5	0	
3822003047	Of 5.4 % rate in the Tariff Schedules	5.4	0	
3822003048	Of 6.5 % rate in the Tariff Schedules	6.5	0	
3822003049	Of 7 % rate in the Tariff Schedules	7	0	
3822003050	Of 8 % rate in the Tariff Schedules	8	3	
3822003051	Of 10 % rate in the Tariff Schedules	10	0	
3822003052	Of 20 % rate in the Tariff Schedules	2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3822003053	Of 27 % rate in the Tariff Schedules	27	0	
3822003054	Of 30 % rate in the Tariff Schedules	30	0	
3822003055	Of 36 % rate in the Tariff Schedules	36	0	
3822003056	Of 40 % rate in the Tariff Schedules	40	0	
3822003057	Of 50 % rate in the Tariff Schedules	50	0	
3822003058	Of subheadings 3706.10.1000, 3706.10.5020 and 3706.90.6020	182won/m or 6.5	0	
3822003059	Of subheadings 3706.10.2000 and 3706.90.2000	4won/m or 6.5	0	
3822003060	Of subheadings 3706.10.3010, 3706.10.4000, 3706.90.3010 and 3706.90.4000	26won/m or 6.5	0	
3822003061	Of subheadings 3706.10.3020 and 3706.90.3020	468won/m or 6.5	0	
3822003062	Of subheadings 3706.10.3030 and 3706.90.3030	78won/m or 6.5	0	
3822003063	Of subheadings 3706.10.5010 and 3706.90.6010	1,092won/m or 6.5	0	
3822003064	Of subheading 3706.10.6010	1,560won/m or 6.5	0	
3822003065	Of subheading 3706.10.6020	260won/m or 6.5	0	
3822003066	Of subheadings 3706.90.1000 and 3706.90.5020	8won/m or 6.5	0	
3822003067	Of subheading 3706.90.5010	25won/m or 6.5	0	
3823110000	Stearic acid	8	3	
3823120000	Oleic acid	8	3	
3823130000	Tall oil fatty acids	8	0	
3823191000	Palmitic acids	8	0	
3823192000	Acid oils from refining	8	0	
3823199000	Other	8	0	
3823701000	Cetyl alcohol	5	0	
3823702000	Stearyl alcohol	5	0	
3823703000	Oleyl alcohol	5	0	
3823704000	Lauryl alcohol	5	0	
382370901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3823709090	Other	5	3	
3824100000	Prepared binders for foundry moulds or cores	6.5	3	
3824300000	Non-agglomerated metal carbides mixed together or with metallic binders	6.5	0	
3824400000	Prepared additives for cements, mortars or concretes	6.5	0	
3824500000	Non-refractory mortars and concretes	6.5	3	
3824600000	Sorbitol other than that of subheading 2905.44	8	3	
3824711000	Detergents based on trichlorotrifluoroethane	6.5	0	
3824719000	Other	6.5	0	
3824720000	Containing bromochlorodifluoromethane, bromotrifluoromethane or dibromotetrafluoroethanes	6.5	0	
3824730000	Containing hydrobromofluorocarbons (HBFCs)	6.5	0	
3824740000	Containing hydrochlorofluorocarbons (HCFCs), whether or not containing perfluorocarbons (PFCs) or hydrofluorocarbons (HFCs), but not containing chlorofluorocarbons (CFCs)	6.5	0	
3824750000	Containing carbon tetrachloride	6.5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3824760000	Containing 1,1,1-trichloroethane (methyl chloroform)	6.5	0	
3824770000	Containing bromomethane (methyl bromide) or bromochloromethane	6.5	0	
3824780000	Containing perfluorocarbons (PFCs) or hydrofluorocarbons (HFCs), but not containing chlorofluorocarbons (CFCs) or hydrochlorofluorocarbons (HCFCs)	6.5	0	
3824790000	Other	6.5	3	
3824810000	Containing oxirane (ethylene oxide)	6.5	0	
3824820000	Containing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polychlorinated terphenyls (PCTs) or polybrominated biphenyls (PBBs)	6.5	0	
3824830000	Containing tris (2,3-dibromopropyl) phosphate	6.5	0	
3824901000	Roasted chromite	5	0	
3824902100	Getters for vaccum tubes	6.5	0	
3824902200	Preparations of carbon resistors or ceramic solid resistors	6.5	0	
3824902410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2	0	
3824902490	Other	6.5	0	
3824903100	Mixtures consisting mainly of O-alkyl (≤C10, including cycloalkyl) alkyl (methyl, ethyl, n-propyl or isopropyl) phosphonofluoridates	6.5	0	
3824903200	Mixtures consisting mainly of O-alkyl (≤C10, including cycloalkyl) N,N-dialkyl (methyl, ehtyl, n-propyl or isopropyl) phosphoramidocyanidates	6.5	0	
3824903300	Mixtures consisting mainly of [S-2-(dialkyl (methyl, ethyl, n-propyl or isopropyl) amino)ethyl]hydrogen alkyl (methyl, ethyl, n-propyl or isopropyl) phosphonothioates and their O-alkyl (≤C10, including cycloalkyl) esters; mixtures consisting mainly of alkylated or protonated salts thereof	6.5	0	
3824903400	Mixtures consisting mainly of alkyl (methyl, ethyl, n-propyl or isopropyl) phosphonyldifluorides	6.5	0	
3824903500	Mixtures consisting mainly of[O-2-dialkyl (methyl, ethyl, n-propyl or isopropyl) aminoethyl] hydrogen alkyl (methyl, ethyl, n-propyl or isopropyl) phosphonites and their O-alkyl (≤C10, including cycloalkyl) esters; mixtures consisting mainly of alkylated or protoanted salts thereof	6.5	0	
3824903600	Mixtures consisting mainly of N,N-dialkyl (methyl, ethyl, n-propyl or isopropyl) phosphoramidic dihalides	6.5	0	
3824903700	Mixtures consisting mainly of dialkyl (methyl, ethyl, n-propyl or isopropyl) N,N-dialkyl (methyl, ethyl, n-propyl or isopropyl) phosphoramidates	6.5	0	
3824903800	Mixtures consisting mainly of N,N-dialkyl (methyl, ethyl, n-propyl or isopropyl) 2-chloroethylamines or their protonated salts	6.5	0	
3824903911	Mixtures consisting mainly of N,N dimethyl-2-amino-ethanol or N,N-diethyl-2-amino ethanol or their protonated salts	6.5	0	
3824903919	Other	6.5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3824903920	Mixtures consisting mainly of N,N-dialkyl (methyl, ethyl, n-propyl or isopropyl) aminoethane-2-thiols or their protonated salts	6.5	0	
3824903930	Other mixtures consisting mainly of chemicals containing a phosphorus atom to which is bonded one methyl, ethyl, n-propyl or isopropyl group but not further carbon atoms	6.5	0	
3824903990	Other	6.5	0	
3824904100	Mixed polyethylene glycol	6.5	0	
3824904200	Ion-exchangers	6.5	0	
3824904300	Anti-scaling compounds	6.5	3	
3824904400	Additives to harden varnish or glue	6.5	3	
3824905100	Ink-removers	6.5	0	
3824905200	Stencil correctors	6.5	0	
3824905300	Correcting fluids	6.5	0	
3824906100	Compounded extenders for paints	6.5	0	
3824906200	Preparations for the manufacture of certain ceramic articles (artificial teeth, etc)	6.5	5	
3824906300	Soda-lime	6.5	0	
3824906400	Hydrated silica gel	6.5	0	
3824906500	Anti-rust preparations	6.5	0	
3824906600	Preparations for the manufacture of ceramic condenser and ferrite core	6.5	0	
3824907100	Metal plating preparations	6.5	0	
3824907200	Chlorinated paraffin	6.5	0	
3824907300	Anti-foaming agent	6.5	0	
3824907400	Foaming agent	6.5	3	
3824907500	Prepared calcium carbonate	6.5	0	
3824907600	Liquid crystal preparations	6.5	0	
3824907700	Ammoniacal gas liquors	6.5	0	
3824908010	Based on methyl ethyl ketone peroxide	6.5	0	
3824908090	Other	6.5	0	
3824909010	Micro-element fertilisers (other than products of Chapter 31)	6.5	3	
3824909020	Polydiphenylmethane polydiisocyanate (Crude-MDI)	6.5	0	
3824909030	Chewing gum base	6.5	0	
3824909050	Naphthenic acids, their water-insoluble salts and their esters	6.5	0	
3824909090	Other	6.5	3	
3825100000	Municipal waste	6.5	0	
3825200000	Sewage sludge	6.5	0	
3825301000	Of heading 30.05	0	0	
3825302000	Of subheading 3824.90	6.5	0	
3825303000	Of subheading 4015.11	8	0	
3825304000	Of subheading 9018.3	8	0	
3825410000	Halogenated	6.5	0	
3825490000	Other	6.5	0	
3825500000	Wastes of metal pickling liquors, hydraulic fluids, brake fluids and anti-freeze fluids	6.5	0	
3825610000	Mainly containing organic constituents	6.5	0	
3825690000	Other	6.5	0	
3825900000	Other	6.5	3	
3901101000	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	6.5	0	
3901109000	Other	6.5	0	
3901201000	Of pulp	6.5	0	
3901209000	Other	6.5	0	
3901300000	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s	6.5	0	
3901900000	Other	6.5	0	
3902100000	Polypropylene	6.5	0	
3902200000	Polyisobutylene	6.5	0	
3902300000	Propylene copolymers	6.5	0	
3902900000	Other	6.5	0	
3903110000	Expansible	6.5	0	
3903190000	Other	6.5	0	
3903200000	Styrene-acrylonitrile (SAN) copolymers	6.5	0	
3903300000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ABS) copolymers	6.5	0	
3903901000	Styrene-butadiene copolymers	6.5	0	
3903909000	Other	6.5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3904100000	Poly (vinyl chloride), not mixed with any other substances	6.5	0	
3904210000	Non-plasticised	6.5	0	
3904220000	Plasticised	6.5	0	
3904300000	Vinyl chloride-vinyl acetate copolymers	6.5	0	
3904400000	Other vinyl chloride copolymers	6.5	0	
3904500000	Vinylidene chloride polymers	6.5	0	
3904610000	Polytetrafluoroethylene	6.5	0	
3904690000	Other	6.5	0	
3904900000	Other	6.5	0	
3905120000	In aqueous dispersion	6.5	0	
3905190000	Other	6.5	0	
3905210000	In aqueous dispersion	6.5	0	
3905290000	Other	6.5	0	
3905300000	Poly(vinyl alcohol), whether or not containing unhydrolysed acetate groups	8	0	
3905910000	Copolymers	6.5	0	
3905990000	Other	6.5	0	
3906100000	Poly(methyl methacrylate)	6.5	0	
3906901000	Poly acryl amide	8	0	
3906909000	Other	8	0	
3907100000	Polyacetals	6.5	0	
3907201000	Polyoxyethylene (polyethylene glycol)	6.5	0	
3907202000	Polyoxypropylene (polypropylene glycol)	6.5	0	
3907203000	Poly phenylene oxide	6.5	0	
3907209000	Other	6.5	0	
3907301000	For making semiconductor	6.5	0	
3907309000	Other	6.5	0	
3907400000	Polycarbonates	6.5	0	
3907500000	Alkyd resins	6.5	0	
3907600000	Poly(ethylene terephthalate)	6.5	0	
3907700000	Poly(lactic acid)	6.5	0	
3907910000	Unsaturated	6.5	0	
3907991000	Poly butylene terephthalate	6.5	0	
3907999000	Other	6.5	0	
3908101000	Polyamide-6	6.5	0	
3908102000	Polyamide-6,6	6.5	0	
3908103000	Polyamide-11, -12, -6,9, -6,10, -6,12	6.5	0	
3908900000	Other	6.5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3909101000	Urea resins	6.5	0	
3909102000	Thiourea resins	6.5	0	
3909200000	Melamine resins	6.5	0	
3909300000	Other amino-resins	6.5	0	
3909400000	Phenolic resins	6.5	0	
3909500000	Polyurethanes	6.5	0	
3910001000	For making semiconductor	6.5	0	
3910009010	Silicon oil	6.5	0	
3910009020	Silicon rubber	6.5	0	
3910009090	Other	6.5	0	
3911101000	Petroleum resins	8	0	
3911102000	Coumarone, indene or coumarone-indene resins	8	0	
3911103000	Polyterpenes	8	0	
3911901000	Polysulphides	6.5	0	
3911902000	Polysulphones	6.5	0	
3911903000	Furan resin	6.5	0	
3911909000	Other	6.5	0	
3912110000	Non-plasticised	5	0	
3912120000	Plasticised	5	0	
3912200000	Cellulose nitrates (including collodions)	6.5	0	
3912311000	Sodium carboxymethyl cellulose	6.5	0	
3912319000	Other	6.5	3	
3912391000	Methyl cellulose	6.5	3	
3912399000	Other	6.5	0	
3912901000	Regenerated cellulose	6.5	0	
3912909000	Other	6.5	0	
3913101000	Sodium alginate	6.5	0	
3913102000	Propylene glycol alginate	6.5	0	
3913109000	Other	6.5	0	
3913901000	Hardened proteins	6.5	0	
3913902010	Chlorinated rubber	6.5	0	
3913902020	Rubber hydrochloride	6.5	0	
3913902030	Oxidised rubber	6.5	0	
3913902040	Cyclised rubber	6.5	0	
3913902090	Other	6.5	0	
3913909010	Dextran	6.5	0	
3913909090	Other	6.5	0	
3914001000	Cationic	6.5	0	
3914009000	Other	6.5	0	
3915101000	Film, sheets, plates and foil before they became wastes	6.5	0	
3915102000	Pipes and hoses before they became wastes	6.5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3915109000	Other	6.5	0	
3915200000	Of polymers of styrene	6.5	0	
3915300000	Of polymers of vinyl chloride	6.5	0	
3915901000	Of polymers of propylene	6.5	0	
3915902000	Of acrylic polymers	6.5	0	
3915903000	Of polyacetals	6.5	0	
3915904000	Of polycarbonates	6.5	0	
3915905000	Of polyamides	6.5	5	
3915909000	Other	6.5	0	
3916100000	Of polymers of ethylene	6.5	0	
3916200000	Of polymers of vinyl chloride	6.5	0	
3916901000	Of polymers of styrene	6.5	0	
3916902000	Of polymers of propylene	6.5	0	
3916903000	Of acrylic polymers	6.5	0	
3916904000	Of polyamides	6.5	0	
3916909000	Other	6.5	0	
3917101000	Of hardened protein	6.5	0	
3917102000	Of cellulosic materials	6.5	0	
3917210000	Of polymers of ethylene	6.5	0	
3917220000	Of polymers of propylene	6.5	0	
3917230000	Of polymers of vinyl chloride	6.5	0	
3917291000	Of polymers of styrene	6.5	0	
3917292000	Of polyamides	6.5	0	
3917299000	Other	6.5	0	
3917311000	Of polymers of ethylene	6.5	0	
3917312000	Of polymers of vinyl chloride	6.5	0	
3917319000	Other	6.5	0	
3917321000	Of polymers of ethylene	6.5	0	
3917322000	Of polymers of vinyl chloride	6.5	0	
3917329000	Other	6.5	0	
3917331000	Of polymers of ethylene	6.5	0	
3917332000	Of polymers of vinyl chloride	6.5	0	
3917339000	Other	6.5	0	
3917391000	Of polymers of ethylene	6.5	3	
3917392000	Of polymers of vinyl chloride	6.5	0	
3917399000	Other	6.5	3	
3917400000	Fittings	6.5	0	
3918101000	Of polyvinyl chloride	6.5	0	
3918102000	Of copolymers of vinyl chloride and vinyl acetate	6.5	0	
3918109000	Other	6.5	5	
3918900000	Of other plastics	6.5	0	
3919100000	In rolls of a width not exceeding 20 cm	6.5	0	
3919900000	Other	6.5	0	
3920100000	Of polymers of ethylene	6.5	0	
3920200000	Of polymers of propylene	6.5	3	
3920300000	Of polymers of styrene	6.5	0	
3920430000	Containing by weight not less than 6 % of plasticisers	6.5	0	
3920490000	Other	6.5	0	
3920510000	Of poly(methyl methacrylate)	6.5	0	
3920590000	Other	6.5	0	
3920610000	Of polycarbonates	6.5	0	
3920620000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6.5	0	
3920630000	Of unsaturated polyesters	6.5	0	
3920690000	Of other polyesters	6.5	0	
3920710000	Of regenerated cellulose	6.5	0	
3920730000	Of cellulose acetate	6.5	0	
3920791000	Of vulcanised fibre	6.5	0	
3920799000	Other	6.5	0	
3920910000	Of poly(vinyl butyral)	6.5	0	
3920920000	Of polyamides	6.5	0	
3920930000	Of amino-resins	6.5	0	
3920940000	Of phenolic resins	6.5	0	
3920991000	For aircrafts	6.5	0	
3920999010	Polyimides film, for manufacturing Printed Circuit Board with the function of lead frame	4	0	
3920999090	Other	6.5	0	
3921110000	Of polymers of styrene	6.5	0	
3921120000	Of polymers of vinyl chloride	6.5	0	
3921130000	Of polyurethanes	6.5	0	
3921140000	Of regenerated cellulose	6.5	0	
3921191010	Separator, for manufacturing secondary battery	4	0	
3921191090	Other	6.5	0	
3921192010	Separator, for manufacturing secondary battery	4	0	
3921192090	Other	6.5	0	
3921193010	Of polymethyl methacrylate	6.5	0	
3921193090	Other	6.5	0	
3921194010	Of polycarbonates	6.5	0	
3921194020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6.5	0	
3921194030	Of unsaturated polyesters	6.5	0	
3921194090	Other	6.5	0	
3921195010	Of vulcanised fibre	6.5	0	
3921195020	Of cellulose acetate	6.5	0	
3921195090	Other	6.5	0	
3921199010	Of polyvinyl butyral	6.5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3921199020	Of polyamides	6.5	0	
3921199030	Of amino-resins	6.5	0	
3921199040	Of phenolic resins	6.5	0	
3921199090	Other	6.5	0	
3921901000	Of polymers of ethylene	6.5	0	
3921902000	Of polymers of propylene	6.5	0	
3921903000	Of polymers of styrene	6.5	0	
3921904010	Rigid	6.5	0	
3921904020	Flexible	6.5	0	
3921905010	Of polymethyl methacrylate	6.5	0	
3921905090	Other	6.5	0	
3921906010	Of polycarbonates	6.5	0	
3921906020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6.5	0	
3921906030	Of unsaturated polyesters	6.5	0	
3921906090	Other	6.5	0	
3921907010	Of regenerated cellulose	6.5	0	
3921907020	Of vulcanised fibre	6.5	0	
3921907030	Of cellulose acetate	6.5	0	
3921907090	Other	6.5	0	
3921909010	Of polyvinyl butyral	6.5	0	
3921909020	Of polyamides	6.5	0	
3921909030	Of amino-resins	6.5	0	
3921909040	Of phenolic resins	6.5	0	
3921909050	Of polyurethanes	6.5	0	
3921909090	Other	6.5	0	
3922101000	Baths and shower baths	6.5	3	
3922102000	Wash-basins	6.5	0	
3922103000	Sinks	6.5	0	
3922200000	Lavatory seats and covers	6.5	0	
3922901000	Bidets	6.5	0	
3922909000	Other	6.5	0	
3923100000	Boxes, cases, crates and similar articles	6.5	0	
3923210000	Of polymers of ethylene	6.5	0	
3923290000	Of other plastics	6.5	0	
3923300000	Carboys, bottles, flasks and similar articles	6.5	0	
3923400000	Spools, cops, bobbins and similar supports	6.5	0	
3923500000	Stoppers, lids, caps and other closures	6.5	0	
3923900000	Other	6.5	0	
3924100000	Tableware and kitchenware	6.5	0	
3924901000	Soap dishes and boxes	6.5	0	
3924902000	Table cloths and other similar articles	6.5	0	
3924909000	Other	6.5	0	
3925100000	Reservoirs, tanks, vats and similar containers, of a capacity exceeding 300 ℓ	6.5	0	
3925200000	Doors, windows and their frames and thresholds for doors	6.5	0	
3925300000	Shutters, blinds (including Venetian blinds) and similar articles and parts thereof	6.5	0	
3925900000	Other	6.5	0	
3926101000	Pencil cases and erasers	6.5	0	
3926102000	Binders and albums	6.5	0	
3926109000	Other	6.5	0	
3926200000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including gloves, mittens and mitts)	6.5	0	
3926300000	Fittings for furniture, coachwork or the like	6.5	3	
3926400000	Statuettes and other ornamental articles	6.5	0	
3926901000	Parts for use in machinery and mechanical appliances	6.5	0	
3926902000	Fans and hand screens non-mechanical; frames and handles therefor and parts of such frames and handles	6.5	0	
3926903000	Lables and tags	6.5	0	
3926904000	Adhesive tapes with case	6.5	0	
3926905000	Frames for painting, photographs, mirrors and the like	6.5	0	
3926909000	Other	6.5	0	
4001100000	Natural rubber latex, whether or not pre-vulcanised	0	0	
4001211000	Rss 1X	0	0	
4001212000	Rss No.1	0	0	
4001213000	Rss No.2	0	0	
4001214000	Rss No.3	0	0	
4001215000	Rss No.4	0	0	
4001216000	Rss No.5	0	0	
4001220000	Technically specified natural rubber (TSNR)	0	0	
4001290000	Other	0	0	
4001301000	Chicle gum	2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4001309000	Other	2	0	
4002110000	Latex	8	0	
4002190000	Other	8	0	
4002201000	Latex	8	0	
4002209000	Other	8	0	
4002311000	Latex	5	0	
4002319000	Other	5	0	
4002391000	Latex	5	0	
4002399010	Of chlorinated-isobutene-isoprene rubber (CIIR)	5	0	
4002399020	Of brominated-isobutene-isoprene rubber (BIIR)	5	0	
4002410000	Latex	8	0	
4002490000	Other	8	0	
4002510000	Latex	8	0	
4002590000	Other	8	0	
4002601000	Latex	8	0	
4002609000	Other	8	0	
4002701000	Latex	8	0	
4002709000	Other	8	0	
4002801000	Latex	8	0	
4002809000	Other	8	0	
4002910000	Latex	8	0	
4002991000	Of carboxylated acrylonitrile-butadiene rubbers (XNBR)	8	0	
4002992000	Of acrylonitrile-isoprene rubbers (NIR)	8	0	
4002993000	Thioplasts (TM)	8	0	
4002999000	Other	8	0	
4003000000	Reclaimed rubber in primary forms or in plates, sheets or strip	8	0	
4004000000	Waste, parings and scrap of rubber (other than hard rubber) and powders and granules obtained therefrom	3	0	
4005101000	Plates, sheets and strip	8	0	
4005109000	Other	8	0	
4005200000	Solutions; dispersions other than those of subheading 4005.10	8	0	
4005910000	Plates, sheets and strip	8	0	
4005991000	Compounded rubber latex	8	0	
4005999000	Other	8	0	
4006100000	"Camel-back" strips for retreading rubber tyres	8	0	
4006901000	Rubber rods	8	0	
4006902000	Rubber tubes	8	0	
4006903000	Rubber profile shapes	8	0	
4006904000	Rubber discs, rings and washers	8	0	
4006905000	Rubber thread	8	0	
4006909000	Other	8	0	
4007001000	Rubber thread	8	0	
4007002000	Rubber cord	8	0	
4008111000	Combined with textile fabrics for reinforcing purposes	8	0	
4008119000	Other	8	3	
4008191000	Combined with textile fabrics for reinforcing purposes	8	0	
4008199000	Other	8	0	
4008211000	Combined with textile fabrics for reinforcing purposes	8	0	
4008219000	Other	8	0	
4008291000	Combined with textile fabrics for reinforcing purposes	8	0	
4008299000	Other	8	0	
4009110000	Without fittings	8	0	
4009120000	With fittings	8	0	
4009210000	Without fittings	8	0	
4009220000	With fittings	8	0	
4009310000	Without fittings	8	3	
4009320000	With fittings	8	0	
4009410000	Without fittings	8	0	
4009420000	With fittings	8	0	
4010110000	Reinforced only with metal	8	0	
4010120000	Reinforced only with textile materials	8	0	
4010191000	Reinforced only with plastics	8	0	
4010199000	Other	8	0	
4010310000	Endless transmission belts of trapezoidal cross-section (V- belts), V-ribbed, of an outside circumference exceeding 60 cm but not exceeding 180 cm	8	0	
4010320000	Endless transmission belts of trapezoidal cross-section (V- belts), other than V-ribbed, of an outside circumference exceeding 60 cm but not exceeding 180 cm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4010330000	Endless transmission belts of trapezoidal cross-section (V-belts), V-ribbed, of an outside circumference exceeding 180 cm but not exceeding 240 cm	8	0	
4010340000	Endless transmission belts of trapezoidal cross-section (V-belts), other than V-ribbed, of an outside circumference exceeding 180 cm but not exceeding 240 cm	8	0	
4010350000	Endless synchronous belts, of an outside circumference exceeding 60 cm but not exceeding 150 cm	8	0	
4010360000	Endless synchronous belts, of an outside circumference exceeding 150 cm but not exceeding 198 cm	8	0	
4010390000	Other	8	0	
4011101000	Of radial carcass	8	0	
4011102000	Of biased carcass	8	0	
4011109000	Other	8	0	
4011201010	For use on a rim measuring less than 49.53 cm in diameter	8	0	
4011201090	Other	8	0	
4011202010	For use on a rim measuring less than 49.53 cm in diameter	8	0	
4011202090	Other	8	0	
4011209000	Other	8	0	
4011300000	Of a kind used on aircraft	5	0	
4011400000	Of a kind used on motorcycles	8	0	
4011500000	Of a kind used on bicycles	8	0	
4011610000	Of a kind used on agricultural or forestry vehicles and machines	8	0	
4011620000	Of a kind used on construction or industrial handling vehicles and machines and having a rim size not exceeding 61 cm	8	0	
4011630000	Of a kind used on construction or industrial handling vehicles and machines and having a rim size exceeding 61 cm	8	0	
4011690000	Other	8	0	
4011920000	Of a kind used on agricultural or forestry vehicles and machines	8	0	
4011930000	Of a kind used on construction or industrial handling vehicles and machines and having a rim size not exceeding 61 cm	8	0	
4011940000	Of a kind used on construction or industrial handling vehicles and machines and having a rim size exceeding 61 cm	8	0	
4011990000	Other	8	3	
4012110000	Of a kind used on motor cars (including station wagons and racing cars)	8	0	
4012120000	Of a kind used on buses or lorries	8	0	
4012130000	Of a kind used on aircraft	5	0	
4012190000	Other	8	0	
4012201000	Of a kind used on aircraft	5	0	
4012209010	Of a kind used on motor cars (including station wagons and racing cars)	8	0	
4012209020	Of a kind used on buses or lorries	8	3	
4012209090	Other	8	0	
4012901010	Solid tyres	5	0	
4012901020	Cushion tyres	5	0	
4012901030	Tyre treads	5	0	
4012901040	Tyre flaps	5	0	
4012909010	Solid tyres	8	0	
4012909020	Cushion tyres	8	0	
4012909030	Tyre treads	8	0	
4012909040	Tyre flaps	8	0	
4012909090	Other	8	0	
4013101000	Of a kind used on motor cars (including station wagons and racing cars)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4013102000	Of a kind used on buses or lorries	8	0	
4013200000	Of a kind used on bicycles	8	0	
4013901000	Of a kind used on aircraft	5	0	
4013909010	Of a kind used on motorcycles or motor scooters	8	0	
4013909020	Of a kind used on industrial vehicles or agricultural machinery	8	0	
4013909090	Other	8	0	
4014100000	Sheath contraceptives	8	0	
4014901000	Teats	8	0	
4014909000	Other	8	0	
4015110000	Surgical	8	0	
4015190000	Other	8	5	
4015901000	Protective clothing for divers	8	0	
4015902000	Protective clothing for radiologists	8	3	
4015909000	Other	8	0	
4016100000	Of cellular rubber	8	0	
4016910000	Floor coverings and mats	8	0	
4016920000	Erasers	8	0	
4016930000	Gaskets, washers and other seals	8	0	
4016940000	Boat or dock fenders, whether or not inflatable	8	0	
4016951000	Pneumatic mattresses	8	0	
4016952000	Pillows	8	0	
4016953000	Cushions	8	0	
4016959000	Other	8	0	
4016991010	Parts of balloons airships, flying machines, gliders, kites, and rotochutes	0	0	
4016991090	Other	8	0	
4016992000	Rubber bands	8	0	
4016993000	Stoppers and rings for bottles	8	0	
4016999000	Other	8	0	
4017001000	Hard rubber	8	0	
4017002000	Articles of hard rubber	8	0	
4101201000	Hides and skins, untanned	1	0	
4101202000	Hides and skins, which have undergone a tanning (including pre-tanning) process which is reversible	5	0	
4101501011	Cow hide	1	0	
4101501012	Steer hide	1	0	
4101501013	Ox hide	1	0	
4101501014	Bull hide	1	0	
4101501019	Other	1	0	
4101501021	Cow hide	1	0	
4101501022	Steer hide	1	0	
4101501023	Ox hide	1	0	
4101501024	Bull hide	1	0	
4101501029	Other	1	0	
4101501090	Other	1	0	
4101502000	Hides and skins, which have undergone a tanning (including pre-tanning) process which is reversible	5	0	
4101901011	Of calf skin	1	0	
4101901019	Other	1	0	
4101901091	Of calf skin	1	0	
4101901099	Other	1	0	
4101902000	Hides and skins, which have undergone a tanning (including pre-tanning) process which is reversible	5	0	
4102100000	With wool on	1	0	
4102211000	Hides and skins, untanned	1	0	
4102212000	Hides and skins, which have undergone a tanning (including pre-tanning) process which is reversible	5	0	
4102291000	Hides and skins, untanned	1	0	
4102292000	Hides and skins, which have undergone a tanning (including pre-tanning) process which is reversible	5	0	
4103201010	Of snake	1	0	
4103201020	Of lizard	1	0	
4103201030	Of crocodile	1	0	
4103201090	Other	1	0	
4103202000	Hides and skins, which have undergone a tanning (including pretanning) process which is reversible	5	0	
4103301000	Hides and skins, untanned	1	0	
4103302000	Hides and skins, which have undergone a tanning (including pretanning) process which is reversible	5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4103901010	Of eels	1	0	
4103901020	Of kangaroo	1	0	
4103901030	Of camels (including dromedaries)	1	0	
4103901090	Other	1	0	
4103902010	Of camels (including dromedaries)	3	0	
4103902090	Other	5	0	
4104110000	Full grains, unsplit; grain splits	5	0	
4104190000	Other	5	0	
4104410000	Full grains, unsplit; grain splits	5	0	
4104490000	Other	5	0	
4105100000	In the wet state (including wet-blue)	5	0	
4105300000	In the dry state (crust)	5	0	
4106210000	In the wet state (including wet-blue)	5	0	
4106220000	In the dry state (crust)	5	0	
4106310000	In the wet state (including wet-blue)	5	0	
4106320000	In the dry state (crust)	5	0	
4106400000	Of reptiles	5	0	
4106910000	In the wet state (including wet-blue)	5	0	
4106920000	In the dry state (crust)	5	0	
4107110000	Full grains, unsplit	5	0	
4107120000	Grain splits	5	0	
4107190000	Other	5	0	
4107910000	Full grains, unsplit	5	0	
4107920000	Grain splits	5	0	
4107990000	Other	5	0	
4112000000	Leather further prepared after tanning or crusting, including parchment-dressed leather, of sheep or lamb, without wool on, whether or not split, other than leather of heading 41.14.	5	0	
4113100000	Of goats or kids	5	0	
4113200000	Of swine	5	0	
4113300000	Of reptiles	5	0	
4113900000	Other	5	0	
4114100000	Chamois (including combination chamois) leather	5	0	
4114201000	Patent leather	5	0	
4114202000	Patent laminated leather	5	0	
4114203000	Metallised leather	5	0	
4115100000	Composition leather with a basis of leather or leather fibre, in slabs, sheets or strip, whether or not in rolls	8	0	
4115200000	Parings and other waste of leather or of composition leather, not suitable for the manufacture of leather articles; leather dust, powder and flour	3	0	
4201001000	Of reptile leather	8	0	
4201009010	Saddles and saddle cloths	8	0	
4201009020	Traces	8	0	
4201009030	Leads	8	0	
4201009040	Muzzles	8	0	
4201009090	Other	8	0	
4202111010	Of snake	8	0	
4202111020	Of lizard	8	0	
4202111030	Of crocodile	8	0	
4202111040	Of eels	8	0	
4202111050	Of kangaroo	8	0	
4202111090	Other	8	0	
4202112000	Of composition leather	8	0	
4202113000	Of patent leather	8	0	
4202121010	Of polyvinylchloride	8	0	
4202121020	Of polyurethane	8	0	
4202121090	Other	8	0	
4202122000	Of textile materials	8	0	
4202191000	Of paper board	8	0	
4202199000	Other	8	0	
4202211010	Of snake	8	0	
4202211020	Of lizard	8	0	
4202211030	Of crocodile	8	0	
4202211040	Of eels	8	0	
4202211050	Of kangaroo	8	0	
4202211090	Other	8	0	
4202212000	Of composition leather	8	0	
4202213000	Of patent leather	8	0	
4202221010	Of polyvinylchloride	8	0	
4202221020	Of polyurethane	8	0	
4202221090	Other	8	0	
4202222000	Of textile materials	8	0	
4202291000	Of paper board	8	0	
4202299000	Other	8	0	
4202311010	Of snake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4202311020	Of lizard	8	0	
4202311030	Of crocodile	8	0	
4202311040	Of eels	8	0	
4202311050	Of kangaroo	8	0	
4202311090	Other	8	0	
4202312000	Of composition leather	8	0	
4202313000	Of patent leather	8	0	
4202321010	Of polyvinylchloride	8	0	
4202321020	Of polyurethane	8	0	
4202321090	Other	8	0	
4202322000	Of textile materials	8	0	
4202391000	Of paper board	8	0	
4202399000	Other	8	0	
4202911010	Of snake	8	0	
4202911020	Of lizard	8	0	
4202911030	Of crocodile	8	0	
4202911040	Of eels	8	0	
4202911050	Of kangaroo	8	0	
4202911090	Other	8	0	
4202912000	Of composition leather	8	0	
4202913000	Of patent leather	8	0	
4202921010	Of polyvinylchloride	8	0	
4202921020	Of polyurethane	8	0	
4202921090	Other	8	0	
4202922000	Of textile materials	8	0	
4202991000	Of paper board	8	0	
4202999000	Other	8	3	
4203101010	Coats	13	0	
4203101020	Jackets, blazers and jumpers	13	0	
4203101050	Vests	13	0	
4203101060	Pants and trousers	13	0	
4203101070	Skirts	13	0	
4203101080	Overalls	13	0	
4203101090	Other	13	0	
4203102010	Coats	13	0	
4203102020	Jackets, blazers and jumpers	13	0	
4203102050	Vests	13	0	
4203102060	Pants and trousers	13	0	
4203102070	Skirts	13	0	
4203102080	Overalls	13	0	
4203102090	Other	13	0	
4203103010	Coats	13	0	
4203103020	Jackets, blazers and jumpers	13	0	
4203103050	Vests	13	0	
4203103060	Pants and trousers	13	0	
4203103070	Skirts	13	0	
4203103080	Overalls	13	0	
4203103090	Other	13	0	
4203109010	Coats	13	0	
4203109020	Jackets, blazers and jumpers	13	0	
4203109050	Vests	13	0	
4203109060	Pants and trousers	13	0	
4203109070	Skirts	13	0	
4203109080	Overalls	13	0	
4203109090	Other	13	0	
4203211000	Baseball glove	13	0	
4203212000	Golf glove	13	0	
4203213000	Ski glove	13	0	
4203214000	Motor cycle glove	13	0	
4203215000	Batting glove	13	0	
4203216000	Tennis glove	13	0	
4203217000	Ice hockey glove	13	0	
4203219000	Other	13	0	
4203291000	Working glove	13	0	
4203292000	Thermal glove	13	0	
4203293000	Driver's glove	13	0	
4203299000	Other	13	0	
4203301010	Of snake	13	0	
4203301020	Of lizard	13	0	
4203301030	Of crocodile	13	0	
4203301040	Of eels	13	0	
4203301090	Other	13	0	
4203309000	Other	13	0	
4203400000	Other clothing accessories	13	0	
4205001110	Belts	8	0	
4205001190	Other	8	0	
4205001900	Other articles of leather	8	3	
4205002110	Belts	8	0	
4205002190	Other	8	0	
4205002900	Other articles of composition leather	8	0	
4206001000	Catgut	8	0	
4206009000	Other	8	0	
4301100000	Of mink, whole, with or without head, tail or paws	3	3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4301300000	Of lamb, the following : Astrakhan, Broadtail, Caracul, Persian and similar lamb, Indian, Chinese, Mongolian or Tibetan lamb, whole, with or without head, tail or paws	3	3	
4301600000	Of fox, whole, with or without head, tail or paws	3	3	
4301801000	Of chinchila	3	3	
4301802000	Of opossum	3	3	
4301803000	Of raccoon	3	3	
4301804000	Of coyote	3	3	
4301805000	Of rabbit or hare	3	3	
4301806000	Of musk-rat	3	3	
4301809000	Other	3	3	
4301900000	Heads, tails, paws and other pieces or cuttings, suitable for furriers' use	3	3	
4302110000	Of mink	5	0	
4302191000	Of beaver	5	0	
4302192000	Of musk-rat	5	0	
4302193000	Of fox	5	0	
4302195000	Of chinchila	5	0	
4302196000	Of opossum	5	0	
4302197000	Of raccoon	5	0	
4302198000	Of coyote	5	0	
4302199010	Of sheep	5	0	
4302199020	Of lamb, the following : Astrakhan, Broadtail, Caracul, Persian and similar lamb, Indian, Chinese, Mongolian or Tibetan lamb	5	0	
4302199090	Other	5	0	
4302201000	Of mink	5	0	
4302202000	Of rabbit or hare	5	0	
4302203000	Of beaver	5	0	
4302204000	Of musk-rat	5	0	
4302205000	Of fox	5	0	
4302207000	Of chinchila	5	0	
4302209010	Of opossum	5	0	
4302209020	Of raccoon	5	0	
4302209030	Of coyote	5	0	
4302209090	Other	5	0	
4302300000	Whole skins and pieces or cuttings thereof, assembled	5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4303101100	Of mink	16	0	
4303101200	Of rabbit or hare	16	0	
4303101300	Of lamb	16	0	
4303101400	Of beaver	16	0	
4303101500	Of musk-rat	16	0	
4303101600	Of fox	16	0	
4303101800	Of chinchila	16	0	
4303101910	Of opossum	16	0	
4303101920	Of raccoon	16	0	
4303101930	Of coyote	16	0	
4303101990	Other	16	0	
4303102100	Of mink	16	0	
4303102200	Of rabbit or hare	16	0	
4303102300	Of lamb	16	0	
4303102400	Of beaver	16	0	
4303102500	Of musk-rat	16	0	
4303102600	Of fox	16	0	
4303102800	Of chinchila	16	0	
4303102910	Of opossum	16	0	
4303102920	Of raccoon	16	0	
4303102930	Of coyote	16	0	
4303102990	Other	16	0	
4303900000	Other	16	7	
4304001000	Artificial fur	8	0	
4304002000	Articles of artificial fur	8	0	
4401100000	Fuel wood, in logs, in billets, in twigs, in faggots or in similar forms	2	3	
4401210000	Coniferous	2	3	
4401221000	For manufacturing pulp	0	0	
4401229000	Other	2	3	
4401301000	Wood pellets	2	0	
4401309000	Other	2	3	
4402101000	Agglomerated wood charcoal	2	3	
4402109000	Other	2	3	
4402901000	Agglomerated wood charcoal	2	3	
4402909000	Other	2	3	
4403101000	Tropical woods	0	0	
4403102000	Non-coniferous	0	0	
4403109000	Coniferous	0	0	
4403201000	Cedar	0	0	
4403202010	Douglas fir	0	0	
4403202020	Hemlock	0	0	
4403203000	Red pine	0	0	
4403204000	White wood or fir	0	0	
4403205000	Larch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4403207000	Spruce	0	0	
4403208000	Radiata pine	0	0	
4403209000	Other	0	0	
4403410000	Dark Red Meranti, Light Red Meranti and Meranti Bakau	0	0	
4403491000	White Lauan, White Meranti, White Seraya, Yellow Meranti and Alan	0	0	
4403492010	Teak	0	0	
4403492020	Keruing	0	0	
4403492030	Kapur	0	0	
4403492040	Jelutong	0	0	
4403492090	Other	0	0	
4403493000	Okoume', Obeche, Sapelli, Sipo, Acajou d'Afrique, Makore and Iroko	0	0	
4403494000	Tiama, Mansonia, Ilomba, Dibetou, Limba and Azobé	0	0	
4403495000	Mahogany and Balsa	0	0	
4403499000	Other	0	0	
4403910000	Of oak (Quercus spp.)	0	0	
4403920000	Of beech (Fagus spp.)	0	0	
4403991010	Rosewood	0	0	
4403991020	Ebonywood	0	0	
4403991040	Ash	0	0	
4403991050	Walnut	0	0	
4403991090	Other	0	0	
4403992000	Lignum vitae	0	0	
4403993010	Aspen	0	0	
4403993020	Poplar	0	0	
4403993030	Maple	0	0	
4403993040	Elm	0	0	
4403993050	Birch	0	0	
4403993060	Basswood	0	0	
4403994000	Paulownia	0	0	
4403999011	Malas	0	0	
4403999012	Taun	0	0	
4403999019	Other	0	0	
4403999090	Other	0	0	
4404102000	Wooden sticks	5	5	
4404109000	Other	5	5	
4404202000	Wooden sticks	5	5	
4404209000	Other	5	5	
4405000000	Wood wool; wood flour	5	5	
4406100000	Not impregnated	5	5	
4406900000	Other	5	5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4407101000	Cedar	5	7	
4407102000	Oregon pine	5	7	
4407103000	Red pine	5	7	
4407104000	White wood or fir	5	7	
4407105000	Larch	5	7	
4407107000	Spruce	5	7	
4407108000	Radiata pine	5	7	
4407109000	Other	5	7	
4407210000	Mahogany (Swietenia spp.)	5	7	
4407220000	Virola, Imbuia and Balsa	5	7	
4407250000	Dark Red Meranti, Light Red Meranti and Meranti Bakau	5	7	
4407260000	White Lauan, White Meranti, White Seraya, Yellow Meranti and Alan	5	7	
4407270000	Sapelli	5	7	
4407280000	Iroko	5	7	
4407291000	Keruing, Ramin, Kapur, Jongkong, Merbau, Jelutong and Kempas	5	7	
4407292000	Teak	5	7	
4407293000	Okoume, Obeche, Sipo, Acajou, d'afrique, Makore, Tiama, Mansonia, Ilomba, Dibetou Limba and Azobe	5	7	
4407299000	Other	5	7	
4407910000	Of oak (Quercus spp.)	5	7	
4407920000	Of beech (Fagus spp.)	5	7	
4407930000	Of maple (Acer spp.)	5	7	
4407940000	Of cherry (Prunus spp.)	5	7	
4407950000	Of ash (Fraxinus spp.)	5	7	
4407991010	Rosewood	5	7	
4407991020	Ebonywood	5	7	
4407991040	Walnut	5	7	
4407991090	Other	5	7	
4407992000	Lignum vitae	5	7	
4407993010	Aspen	5	7	
4407993020	Poplar	5	7	
4407993040	Elm	5	7	
4407993050	Birch	5	7	
4407993060	Basswood	5	7	
4407994000	Paulownia	5	7	
4407999010	Tropical woods, not specified in the foregoing	5	7	
4407999090	Other	5	7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4408106000	For veneering obtained by slicing laminated wood or for other similar laminated wood	8	5	
4408109100	For manufacturing plywood	3	0	
4408109200	Patterned veneer	3	5	
4408109910	Cedar	5	5	
4408109920	Oregon pine	5	5	
4408109930	Red pine	5	5	
4408109940	White wood or fir	5	5	
4408109950	Larch	5	5	
4408109960	Spruce	5	5	
4408109970	Radiata pine	5	5	
4408109990	Other	5	5	
4408313000	For veneering obtained by slicing laminated wood or for other similar laminated wood	8	5	
4408319011	For manufacturing plywood	3	0	
4408319012	Patterned veneer	3	5	
4408319019	Other	5	5	
4408319021	For manufacturing plywood	3	0	
4408319022	Patterned veneer	3	5	
4408319029	Other	5	5	
4408396000	For veneering obtained by slicing laminated wood or for other similar laminated wood	8	5	
4408399011	For manufacturing plywood	3	0	
4408399012	Patterned veneer	3	5	
4408399019	Other	5	5	
4408399021	For manufacturing plywood	3	0	
4408399022	Patterned veneer	3	5	
4408399029	Other	5	5	
4408399031	For manufacturing plywood	3	0	
4408399032	Patterned veneer	3	5	
4408399039	Other	5	5	
4408399041	For manufacturing plywood	3	0	
4408399042	Patterned veneer	3	5	
4408399049	Other	5	5	
4408399051	For manufacturing plywood	3	0	
4408399052	Patterned veneer	3	5	
4408399059	Other	5	5	
4408399091	For manufacturing plywood	3	0	
4408399092	Patterned veneer	3	5	
4408399099	Other	5	5	
4408901000	For veneering obtained by slicing laminated wood or for other similar laminated wood	8	5	
4408909150	For manufacturing plywood	3	0	
4408909160	Patterned veneer	3	5	
4408909191	Rosewood	5	5	
4408909192	Ebonywood	5	5	
4408909193	Ash	5	5	
4408909194	Walnut	5	5	
4408909195	Oak	5	5	
4408909199	Other	5	5	
4408909210	For manufacturing plywood	3	0	
4408909220	Patterned veneer	3	5	
4408909290	Other	5	5	
4408909370	For manufacturing plywood	3	0	
4408909380	Patterned veneer	3	5	
4408909391	Aspen	5	5	
4408909392	Poplar	5	5	
4408909393	Maple	5	5	
4408909394	Elm	5	5	
4408909395	Birch	5	5	
4408909396	Basswood	5	5	
4408909410	For manufacturing plywood	3	0	
4408909420	Patterned veneer	3	5	
4408909490	Other	5	5	
4408909912	For manufacturing plywood	3	0	
4408909913	Patterned veneer	3	5	
4408909914	Baboen	5	5	
4408909919	Other	5	5	
4408909991	For manufacturing plywood	3	0	
4408909992	Patterned veneer	3	5	
4408909999	Other	5	5	
4409100000	Coniferous	8	12	
4409210000	Of bamboo	8	12	
4409290000	Other	8	12	
4410111000	Unworked or not further worked than sanded	8	E	
4410112000	Surface-covered with melamine-impregnated paper	8	15	
4410113000	Surface-covered with decorative laminates of plastics	8	15	
4410119000	Other	8	15	
4410121000	Unworked or not further worked than sanded	8	15	
4410129000	Other	8	15	
4410191010	Unworked or not further worked than sanded	8	15	
4410191090	Other	8	15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4410199010	Unworked or not further worked than sanded	8	15	
4410199020	Surface-covered with melamine-impregnated paper	8	15	
4410199030	Surface-covered with decorative laminates of plastics	8	15	
4410199090	Other	8	15	
4410900000	Other	8	15	
4411121000	Not mechanically worked or surface covered	8	12	
4411122000	Mechanically worked or surface covered	8	10	
4411129000	Other	8	10	
4411131000	Not mechanically worked or surface covered	8	12	
4411132000	Mechanically worked or surface covered	8	10	
4411139000	Other	8	10	
4411141000	Not mechanically worked or surface covered	8	12	
4411142010	Floor board	8	15	
4411142090	Other	8	10	
4411149000	Other	8	10	
4411921000	Not mechanically worked or surface covered	8	12	
4411922010	Floor board	8	15	
4411922090	Other	8	10	
4411929000	Other	8	10	
4411931000	Not mechanically worked or surface covered	8	12	
4411932010	Floor board	8	15	
4411932090	Other	8	10	
4411939000	Other	8	10	
4411941000	Not mechanically worked or surface covered	8	12	
4411949000	Other	8	10	
4412101010	Of a thickness less than 6 mm	8	10	
4412101020	Of a thickness not less than 6 mm	8	10	
4412102000	Floor board	8	10	
4412109010	Of a whole thickness not less than 6 mm, with each ply not exceeding 6 mm thickness	8	10	
4412109090	Other	8	1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4412311000	Of a thickness less than 3.2 mm	8	10	
4412312000	Of a thickness less than 4 mm but not less than 3.2 mm	8	10	
4412313000	Of a thickness less than 6 mm but not less than 4 mm	8	10	
4412314000	Of a thickness less than 10 mm but not less than 6 mm	10	12	
4412315000	Of a thickness less than 12 mm but not less than 10 mm	10	E	
4412316000	Of a thickness less than 15 mm but not less than 12 mm	10	E	
4412317000	Of a thickness not less than 15 mm	10	12	
4412321000	Of a thickness less than 3.2 mm	8	10	
4412322000	Of a thickness less than 4 mm but not less than 3.2 mm	8	10	
4412323000	Of a thickness less than 6 mm but not less than 4 mm	8	10	
4412324000	Of a thickness less than 10 mm but not less than 6 mm	10	12	
4412325000	Of a thickness less than 12 mm but not less than 10 mm	10	E	
4412326000	Of a thickness less than 15 mm but not less than 12 mm	10	E	
4412327000	Of a thickness not less than 15 mm	10	12	
4412391010	Of a thickness less than 6 mm	8	10	
4412391090	Other	10	12	
4412399010	Of a thickness less than 6 mm	8	10	
4412399090	Other	10	12	
4412941000	Blockboard	8	10	
4412942000	Laminboard	8	10	
4412943000	Battenboard	8	10	
4412991011	Of a whole thickness not less than 6 mm, with each ply not exceeding 6 mm thickness	10	12	
4412991019	Other	8	12	
4412991021	Of a whole thickness not less than 6 mm, with each ply not exceeding 6 mm thickness	10	12	
4412991029	Other	8	12	
4412991031	Of a whole thickness not less than 6 mm, with each ply not exceeding 6 mm thickness	10	12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4412991039	Other	8	12	
4412991041	Floor board, of a whole thickness not less than 6 mm, with each ply not exceeding 6 mm thickness	10	12	
4412991042	Floor board, other	8	12	
4412991043	Other, of a whole thickness not less than 6 mm, with each ply not exceeding 6 mm thickness	10	12	
4412991049	Other	8	12	
4412992010	Of a whole thickness not less than 6 mm, with each ply not exceeding 6 mm thickness	10	12	
4412992090	Other	8	12	
4412993010	Of a whole thickness not less than 6 mm, with each ply not exceeding 6 mm thickness	10	12	
4412993090	Other	8	12	
4412999111	Of a whole thickness not less than 6 mm, with each ply not exceeding 6 mm thickness	10	E	
4412999119	Other	8	12	
4412999191	Of a whole thickness not less than 6 mm, with each ply not exceeding 6 mm thickness	10	12	
4412999199	Other	8	12	
4412999211	Of a whole thickness not less than 6 mm, with each ply not exceeding 6 mm thickness	10	E	
4412999219	Other	8	12	
4412999291	Of a whole thickness not less than 6 mm, with each ply not exceeding 6 mm thickness	10	12	
4412999299	Other	8	12	
4413000000	Densified wood, in blocks, plates, strips or profile shapes	8	10	
4414000000	Wooden frames for paintings, photographs, mirrors or similar objects	8	10	
4415100000	Cases, boxes, crates, drums and similar packings; cable-drums	8	10	
4415200000	Pallets, box pallets and other load boards; pallet collars	8	10	
4416000000	Casks, barrels, vats, tubs and other coopers' products and parts thereof, of wood, including staves	8	10	
4417000000	Tools, tool bodies, tool handles, broom or brush bodies and handles, of wood; boot or shoe lasts and trees, of wood	8	10	
4418100000	Windows, French-windows and their frames	8	10	
4418200000	Doors and their frames and thresholds	8	10	
4418400000	Shuttering for concrete constructional work	8	10	
4418500000	Shingles and shakes	8	10	
4418600000	Posts and beams	8	10	
4418711000	Parquet panels	8	10	
4418719000	Other	8	10	
4418721000	Parquet panels	8	10	
4418729000	Other	8	10	
4418791000	Parquet panels	8	10	
4418799000	Other	8	10	
4418901000	Cellular wood panels	8	10	
4418909000	Other	8	10	
4419001000	Bowls	8	10	
4419002010	Of bamboo	8	10	
4419002090	Other	8	10	
4419009000	Other	8	10	
4420101000	Statuettes	8	10	
4420109000	Other	8	10	
4420901000	Wood marquetry and inlaid wood	8	10	
4420902010	Cigarette caskets or case	8	10	
4420902020	Jewellery casket or case	8	10	
4420902030	Other articles of furniture, not falling within Chapter 94	8	10	
4420902090	Other	8	10	
4420909010	Cigarette, jewellery casket or case	8	10	
4420909020	Other articles of furniture, not falling within Chapter 94	8	10	
4420909090	Other	8	10	
4421100000	Clothes hangers	8	10	
4421901010	Bobbins	8	10	
4421901090	Other	8	1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4421902000	Match splints; wooden pegs or pins for footwear	8	10	
4421903000	Toothpick	8	10	
4421904000	Wood paving blocks	8	10	
4421905000	Fans and hand screens, nonmechanical; frames and handles therefor and parts of such frames and handles	8	10	
4421909000	Other	8	10	
4501100000	Natural cork, raw or simply prepared	8	10	
4501900000	Other	8	10	
4502000000	Natural cork, debacked or roughly squared, or in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blocks, plates, sheets or strip (including sharp-edged blanks for corks or stoppers)	8	10	
4503100000	Corks and stoppers	8	10	
4503900000	Other	8	10	
4504100000	Blocks, plates, sheets and strip; tiles of any shape; solid cylinders, including discs	8	10	
4504900000	Other	8	10	
4601211000	Mats and matting	8	0	
4601212000	Screens	8	0	
4601221000	Mats and matting	8	0	
4601222000	Screens	8	0	
4601291000	Mats and matting	8	0	
4601292000	Screens	8	0	
4601921000	Eunjukbaljang (of width less than 35 cm)	8	0	
4601929000	Other	8	0	
4601930000	Of rattan	8	0	
4601941000	Eunjukbaljang (of width less than 35 cm)	8	0	
4601949000	Other	8	0	
4601991000	Articles in sheets plaited with plastics	8	0	
4601999000	Other	8	0	
4602111000	Basket	8	10	
4602112000	Trays, dishes and other similar kitchen or tablewares	8	10	
4602119000	Other	8	10	
4602120000	Of rattan	8	10	
4602191000	Articles of rush	8	0	
4602199000	Other	8	0	
4602900000	Other	8	0	
4701001000	Unbleached	0	0	
4701002000	Semi-bleached or bleached	0	0	
4702000000	Chemical wood pulp, dissolving grades	0	0	
4703110000	Coniferous	0	0	
4703190000	Non-coniferous	0	0	
4703211000	Semi-bleached	0	0	
4703212000	Bleached	0	0	
4703291000	Semi-bleached	0	0	
4703292000	Bleached	0	0	
4704110000	Coniferous	0	0	
4704190000	Non-coniferous	0	0	
4704210000	Coniferous	0	0	
4704290000	Non-coniferous	0	0	
4705000000	Wood pulp obtained by a combination of mechanical and chemical pulping processes	0	0	
4706100000	Cotton linters pulp	0	0	
4706200000	Pulps of fibres derived from recovered (waste and scrap) paper or paperboard	0	0	
4706301000	Mechanical	0	0	
4706302000	Chemical	0	0	
4706303000	Semi-chemical	0	0	
4706911000	Unbleached	0	0	
4706912000	Semi-bleached or bleached	0	0	
4706921000	Unbleached	0	0	
4706922000	Semi-bleached or bleached	0	0	
4706931000	Unbleached	0	0	
4706932000	Semi-bleached or bleached	0	0	
4707100000	Unbleached kraft paper or paperboard or corrugated paper or paperboard	0	0	
4707200000	Other paper or paperboard made mainly of bleached chemical pulp, not coloured in the mass	0	0	
4707300000	Paper or paperboard made mainly of mechanical pulp (for example, newspapers, journals and similar printed matter)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4707900000	Other, including unsorted waste and scrap	0	0	
4801000000	Newsprint, in rolls or sheets	0	0	
4802100000	Hand-made paper and paperboard	0	0	
4802200000	Paper and paperboard of a kind used as a base for photo-sensitive, heat-sensitive or electro-sensitive paper or paperboard	0	0	
4802400000	Wallpaper base	0	0	
4802541010	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bleached each layer	0	0	
4802541090	Other	0	0	
4802549010	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bleached each layer	0	0	
4802549090	Other	0	0	
4802551010	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bleached each layer	0	0	
4802551020	Copy or duplicating paper	0	0	
4802551030	Business machine paper and continuous forms bond(including Optical Mark Reading paper and Optical Character Reading paper)	0	0	
4802551040	Fancy paper	0	0	
4802551090	Other	0	0	
4802559010	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bleached each layer	0	0	
4802559090	Other	0	0	
4802561010	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bleached each layer	0	0	
4802561020	Copy or duplicating paper	0	0	
4802561030	Business machine paper and continuous forms bond(including OMR paper and OCR paper)	0	0	
4802561040	Fancy paper	0	0	
4802561090	Other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4802569010	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bleached each layer	0	0	
4802569090	Other	0	0	
4802571010	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bleached each layer	0	0	
4802571020	Copy or duplicating paper	0	0	
4802571030	Business machine paper and continuous forms bond(including OMR paper and OCR paper)	0	0	
4802571040	Fancy paper	0	0	
4802571090	Other	0	0	
4802579010	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bleached each layer	0	0	
4802579090	Other	0	0	
4802581010	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bleached each layer	0	0	
4802581020	Fancy paper	0	0	
4802581090	Other	0	0	
4802582010	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bleached each layer	0	0	
4802582090	Other	0	0	
4802589010	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bleached each layer	0	0	
4802589090	Other	0	0	
4802611010	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bleached each layer	0	0	
4802611020	Copy or duplicating paper	0	0	
4802611030	Business machine paper and continuous forms bond(including OMR paper and OCR paper)	0	0	
4802611040	Fancy paper	0	0	
4802611090	Other	0	0	
4802619010	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bleached each layer	0	0	
4802619090	Other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4802621010	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bleached each layer	0	0	
4802621020	Copy or duplicating paper	0	0	
4802621030	Business machine paper and continuous forms bond(including OMR paper and OCR paper)	0	0	
4802621040	Fancy paper	0	0	
4802621090	Other	0	0	
4802629010	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bleached each layer	0	0	
4802629090	Other	0	0	
4802691010	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bleached each layer	0	0	
4802691020	Copy or duplicating paper	0	0	
4802691030	Business machine paper and continuous forms bond(including OMR paper and OCR paper)	0	0	
4802691040	Fancy paper	0	0	
4802691090	Other	0	0	
4802699010	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bleached each layer	0	0	
4802699090	Other	0	0	
4803001000	Toilet or facial tissue stock for household or sanitary purposes	0	0	
4803002000	Cellulose wadding and webs of cellulose fibres	0	0	
4803009000	Other	0	0	
4804110000	Unbleached	0	0	
4804190000	Other	0	0	
4804210000	Unbleached	0	0	
4804290000	Other	0	0	
4804311000	Electric insulating paper and paper board	0	0	
4804312000	Condenser paper and paperboard	0	0	
4804313000	Wrapping paper and paperboard	0	0	
4804319000	Other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4804391000	Electric insulating paper and paperboard	0	0	
4804392000	Condenser paper and paperboard	0	0	
4804393000	Wrapping paper and paperboard	0	0	
4804399000	Other	0	0	
4804411010	Weighing less than 200 g/m²	0	0	
4804411090	Other	0	0	
4804419010	Weighing less than 200 g/m²	0	0	
4804419090	Other	0	0	
4804421010	Base stock for milk cartons and other beverage containers	0	0	
4804421020	Folding carton stock (including cosmetic, pharmaceutic, cigarette case and the like)	0	0	
4804421030	Base stock for trays, dishes, plates, cups and the like	0	0	
4804421090	Other	0	0	
4804429010	Base stock for milk cartons and other beverage containers	0	0	
4804429020	Folding carton stock(Including cosmetic, pharmaceutic, cigarette case and the like)	0	0	
4804429030	Base stock for trays, dishes, plates, cups and the like	0	0	
4804429090	Other	0	0	
4804491000	Weighing less than 200 g/m²	0	0	
4804499000	Other	0	0	
4804510000	Unbleached	0	0	
4804521000	Base stock for milk cartons and other beverage containers	0	0	
4804522000	Folding carton stock(Including cosmetic, pharmaceutic, cigarette case and the like)	0	0	
4804523000	Base stock for trays, dishes, plates, cups and the like	0	0	
4804529000	Other	0	0	
4804590000	Other	0	0	
4805110000	Semi-chemical fluting paper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4805120000	Straw fluting paper	0	0	
4805190000	Other	0	0	
4805241000	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bleached each layer	0	0	
4805249000	Other	0	0	
4805251000	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bleached each layer	0	0	
4805259000	Other	0	0	
4805300000	Sulphite wrapping paper	0	0	
4805400000	Filter paper and paperboard	0	0	
4805500000	Felt paper and paperboard	0	0	
4805911000	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bleached each layer	0	0	
4805919010	Condenser paper and paperboard	0	0	
4805919090	Other	0	0	
4805921000	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bleached each layer	0	0	
4805929000	Other	0	0	
4805931000	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bleached each layer	0	0	
4805939000	Other	0	0	
4806100000	Vegetable parchment	0	0	
4806200000	Greaseproof papers	0	0	
4806300000	Tracing papers	0	0	
4806401000	Glassine paper	0	0	
4806409000	Other	0	0	
4807000000	Composite paper and paperboard (made by sticking flat layers of paper or paperboard together with an adhesive), not surface-coated or impregnated, whether or not internally reinforced, in rolls or sheets	0	0	
4808100000	Corrugated paper and paperboard, whether or not perforated	0	0	
4808200000	Sack kraft paper, creped or crinkled, whether or not embossed or perforated	0	0	
4808300000	Other kraft paper, creped or crinkled, whether or not embossed or perforated	0	0	
4808900000	Other	0	0	
4809201000	One-ply	0	0	
4809202000	Multi-ply	0	0	
4809901000	Transfer paper	0	0	
4809902010	Weighing not less than 65g/㎡	0	0	
4809902090	Other	0	0	
4809903000	Graphic art paper	0	0	
4809904000	Carbon or similar copying papers	0	0	
4809909000	Other	0	0	
4810131000	Printing or writing paper and paperboard	0	0	
4810139000	Other	0	0	
4810141000	Printing or writing paper and paperboard	0	0	
4810149000	Other	0	0	
4810191000	Printing or writing paper and paperboard	0	0	
4810199000	Other	0	0	
4810220000	Light-weight coated paper	0	0	
4810290000	Other	0	0	
4810311000	Folding carton stock(Including cosmetic, pharmaceutic, cigarette case and the like)	0	0	
4810312000	Base stock for trays, dishes, plates, cups and the like	0	0	
4810319000	Other	0	0	
4810321000	Folding carton stock(Including cosmetic, pharmaceutic, cigarette case and the like)	0	0	
4810322000	Base stock for trays, dishes, plates, cups and the like	0	0	
4810329000	Other	0	0	
4810390000	Other	0	0	
4810921010	Weighing not more than 250g/㎡	0	0	
4810921090	Other	0	0	
4810922000	Ivory duplex board with white back	0	0	
4810929000	Other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4810991000	Matrix paper	0	0	
4810992000	Filter paper	0	0	
4810999000	Other	0	0	
4811101000	Roofing paper	0	0	
4811109000	Other	0	0	
4811410000	Self-adhesive	0	0	
4811490000	Other	0	0	
4811511000	Weighing more than 150 g/㎡ but not more than 265 g/㎡	0	0	
4811519011	Floor coverings on a base of paper or of paperboard	0	0	
4811519019	Other	0	0	
4811519090	Other	0	0	
4811590000	Other	0	0	
4811600000	Paper and paperboard, coated, impregnated or covered with wax, paraffin wax, stearin, oil or glycerol	0	0	
4811901010	Ruled, lined or squared	0	0	
4811901090	Other	0	0	
4811902010	Cellulose wadding	0	0	
4811902090	Other	0	0	
4812000000	Filter blocks, slabs and plates, of paper pulp	0	0	
4813100000	In the form of booklets or tubes	0	0	
4813200000	In rolls of a width not exceeding 5 cm	0	0	
4813900000	Other	0	0	
4814100000	"Ingrain" paper	0	0	
4814201000	Wall paper	0	0	
4814202000	Lincrusta	0	0	
4814209000	Other	0	0	
4814901010	Of kohemp fiber	0	0	
4814901090	Other	0	0	
4814909000	Other	0	0	
4816201000	One ply	0	0	
4816202000	Multi-ply	0	0	
4816901000	Transfer paper	0	0	
4816902010	Weighing more than 65g/㎡	0	0	
4816902090	Other	0	0	
4816903000	Graphic art paper	0	0	
4816904000	Carbon or similar copying papers	0	0	
4816905000	Duplicator stencils	0	0	
4816909000	Other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4817100000	Envelopes	0	0	
4817200000	Letter cards, plain postcards and correspondence cards	0	0	
4817300000	Boxes, pouches, wallets and writing compendiums, of paper or paperboard, containing an assortment of paper stationery	0	0	
4818100000	Toilet paper	0	0	
4818200000	Handkerchiefs, cleansing or facial tissues and towels	0	0	
4818300000	Tablecloths and serviettes	0	0	
4818401000	Napkin and napkin liners for babies	0	0	
4818409000	Other	0	0	
4818500000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0	0	
4818900000	Other	0	0	
4819100000	Cartons, boxes and cases, of corrugated paper or paperboard	0	0	
4819200000	Folding cartons, boxes and cases, of non-corrugated paper or paperboard	0	0	
4819300000	Sacks and bags, having a base of a width of 40 cm or more	0	0	
4819400000	Other sacks and bags, including cones	0	0	
4819501000	Suitable for packing liquid	0	0	
4819509000	Other	0	0	
4819600000	Box files, letter trays, storage boxes and similar articles, of a kind used in offices, shops or the like	0	0	
4820100000	Registers, account books, note books, order books, receipt books, letter pads, memorandum pads, diaries and similar articles	0	0	
4820200000	Exercisebooks	0	0	
4820300000	Binders (other than book covers), folders and file covers	0	0	
4820400000	Manifold business forms and interleaved carbon sets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4820500000	Albums for samples or for collections	0	0	
4820900000	Other	0	0	
4821100000	Printed	0	0	
4821900000	Other	0	0	
4822100000	Of a kind used for winding textile yarn	0	0	
4822900000	Other	0	0	
4823200000	Filter paper and paperboard	0	0	
4823400000	Rolls, sheets and dials, printed for self-recording apparatus	0	0	
4823610000	Of bamboo	0	0	
4823690000	Other	0	0	
4823700000	Moulded or pressed articles of paper pulp	0	0	
4823901010	Cards punched	0	0	
4823901090	Other	0	0	
4823902000	Electric insulating paper	0	0	
4823903011	Floor coverings on a base of paper or of paperboard	0	0	
4823903019	Other	0	0	
4823903021	Floor coverings on a base of paper or of paperboard	0	0	
4823903029	Other	0	0	
4823903090	Other	0	0	
4823905000	Perforated paper for jacquard weaving machines	0	0	
4823909011	Floor coverings on a base of paper or of paperboard	0	0	
4823909019	Other	0	0	
4823909090	Other	0	0	
4901101000	Printed in Korean	0	0	
4901109000	Other	0	0	
4901911000	Printed in Korean	0	0	
4901919000	Other	0	0	
4901991000	Printed in Korean	0	0	
4901999000	Other	0	0	
4902101010	Newspapers	0	0	
4902101090	Other	0	0	
4902109000	Other	0	0	
4902901010	Journals	0	0	
4902901090	Other	0	0	
4902909010	Journals	0	0	
4902909090	Other	0	0	
4903000000	Children's picture, drawing or colouring books	0	0	
4904000000	Music, printed or in manuscript, whether or not bound or illustrated	0	0	
4905100000	Globes	0	0	
4905911000	Maps and hydrographic chart	0	0	
4905919000	Other	0	0	
4905990000	Other	0	0	
4906001000	Plans	0	0	
4906002000	Drawings	0	0	
4906009000	Other	0	0	
4907001000	Unused postage stamp	0	0	
4907002000	Air way bill	0	0	
4907009000	Other	0	0	
4908100000	Transfers (decalcomanias), vitrifiable	0	0	
4908901000	Transfers (decalcomanias) for cushion flooring sheet	0	0	
4908909000	Other	0	0	
4909000000	Printed or illustrated postcards; printed cards bearing personal greetings, messages or announcements, whether or not illustrated, with or without envelopes or trimmings	0	0	
4910001000	Of paper or paperboard	0	0	
4910009000	Other	0	0	
4911100000	Trade advertising material, commercial catalogues and the like	0	0	
4911911000	Printed plans and drawings	0	0	
4911919000	Other	0	0	
4911990000	Other	0	0	
5001000000	Silk-worm cocoons suitable for reeling	51% or 5,276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10	
5002001010	Not more than 20 decitex	3	10	
5002001020	More than 20 decitex but not more than 25.56 decitex	51.7% or 17,215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1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5002001030	More than 25.56 decitex but not more than 28.89 decitex	51.7% or 17,215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10	
5002001040	More than 28.89 decitex but not more than 36.67 decitex	51.7% or 17,215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10	
5002001050	More than 36.67 decitex	51.7% or 17,215won/kg, whichever is the greater	10	
5002002000	Doupion silk	3	3	
5002009000	Other	8	3	
5003001100	Cocoon waste	2	0	
5003001200	Floss silk	2	0	
5003001300	Bisu	2	0	
5003001400	Frison	2	0	
5003001900	Other	2	0	
5003009100	Pegine	2	0	
5003009200	Silk noil (Bourette)	2	0	
5003009900	Other	2	0	
5004000000	Silk yarn (other than yarn spun from silk waste) not put up for retail sale	8	0	
5005001000	Hand made yarn	8	0	
5005002000	Yarn spun from silk waste	8	0	
5005003000	Yarn spun from noil silk	8	0	
5006001000	Silk yarn	8	0	
5006002000	Hand made yarn	8	0	
5006003000	Yarn spun from silk waste	8	0	
5006004000	Yarn spun from noil silk	8	0	
5006005000	Silk worm gut	8	0	
5007100000	Fabrics of noil silk	13	0	
5007201000	Silk fabrics, grey	13	0	
5007202010	Shibori	13	0	
5007202020	Satin	13	0	
5007202030	Crepe de chine	13	0	
5007202090	Other	13	0	
5007209000	Other	13	0	
5007901000	Silk fabrics, grey	13	0	
5007902000	Silk woven fabrics, mixed with acetate yarn	13	0	
5007903000	Silk woven fabrics, mixed with other man-made fiber	13	0	
5007904000	Silk woven fabrics, mixed with wool	13	0	
5007909000	Other	13	0	
5101110000	Shorn wool	0	0	
5101190000	Other	0	0	
5101210000	Shorn wool	0	0	
5101290000	Other	0	0	
5101300000	Carbonised	0	0	
5102110000	Of Kashmir (cashmere) goats	0	0	
5102190000	Other	0	0	
5102200000	Coarse animal hair	0	0	
5103100000	Noils of wool or of fine animal hair	0	0	
5103200000	Other waste of wool or of fine animal hair	0	0	
5103300000	Waste of coarse animal hair	0	0	
5104000000	Garnetted stock of wool or of fine or coarse animal hair	0	0	
5105100000	Carded wool	0	0	
5105210000	Combed wool in fragments	0	0	
5105291000	Top of all wool	0	0	
5105292000	Top of blended wool	0	0	
5105293000	Roving	0	0	
5105299000	Other	0	0	
5105310000	Of Kashmir (cashmere) goats	0	0	
5105390000	Other	0	0	
5105400000	Coarse animal hair, carded or combed	0	0	
5106101000	Of all wool	8	0	
5106109000	Other	8	0	
5106201000	Mixed with polyester fiber	8	0	
5106202000	Mixed with polyamide fiber	8	0	
5106203000	Mixed with acrylic fiber	8	0	
5106204000	Mixed with other synthetic fiber	8	0	
5106209000	Other	8	0	
5107101000	Of all wool	8	0	
5107102000	Mixed with synthetic fiber	8	0	
5107109000	Mixed with other fiber	8	0	
5107201000	Mixed with polyester fiber	8	0	
5107202000	Mixed with polyamide fiber	8	0	
5107203000	Mixed with acrylic fiber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5107204000	Mixed with other synthetic fiber	8	0	
5107209000	Mixed with other fiber	8	0	
5108100000	Carded	8	0	
5108200000	Combed	8	0	
5109101000	Yarn of wool	8	0	
5109109000	Yarn of fine animal hair	8	0	
5109901000	Yarn of wool	8	0	
5109909000	Yarn of fine animal hair	8	0	
5110000000	Yarn of coarse animal hair or of horsehair (including gimped horsehair yarn), whether or not put up for retail sale	8	0	
5111111000	Of wool	13	0	
5111112000	Of fine animal hair	13	0	
5111191000	Of wool	13	0	
5111192000	Of fine animal hair	13	0	
5111200000	Other, mixed mainly or solely with man-made filaments	13	0	
5111300000	Other, mixed mainly or solely with man-made staple fibres	13	0	
5111900000	Other	13	0	
5112111000	Of wool	13	0	
5112112000	Of fine animal hair	13	0	
5112191000	Of wool	13	0	
5112192000	Of fine animal hair	13	0	
5112200000	Other, mixed mainly or solely with man-made filaments	13	0	
5112300000	Other, mixed mainly or solely with man-made staple fibres	13	0	
5112900000	Other	13	0	
5113000000	Woven fabrics of coarse animal hair or of horsehair	13	0	
5201001000	Seed cotton	0	0	
5201009010	Less than 23.2 mm (7/8 inch) of fibre-length	0	0	
5201009020	Not less than 23.2 mm (7/8 inch), but less than 25.4 mm (1 inch) of fibre-length	0	0	
5201009030	Not less than 25.4 mm (1 inch), but less than 28.5 mm (1-1/8 inch) of fibre-length	0	0	
5201009050	Not less than 28.5 mm (1-1/8 inch), but less than 34.9 mm (1-3/8 inch) of fiber length	0	0	
5201009060	Not less than 34.9 mm (1-3/8 inch) of fiber-length	0	0	
5202100000	Yarn waste (including thread waste)	0	0	
5202910000	Garnetted stock	0	0	
5202990000	Other	0	0	
5203000000	Cotton, carded or combed	0	0	
5204110000	Containing 85 % or more by weight of cotton	8	0	
5204190000	Other	8	0	
5204200000	Put up for retail sale	8	0	
520511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3	
5205119000	Other	8	0	
5205121010	Measuring not more than 370.37 decitex but not less than 232.56 decitex (not less than 27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43 metric number), excluding open end yarn	4	0	
5205121090	Other	8	0	
5205129000	Other	8	0	
520513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0	
5205139000	Other	8	0	
520514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0	
5205149000	Other	8	0	
520515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0	
5205159000	Other	8	0	
520521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5	
5205219000	Other	8	5	
520522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5	
5205229000	Other	8	5	
520523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5	
5205239000	Other	8	5	
520524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5	
5205249000	Other	8	5	
520526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5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5205269000	Other	8	5	
520527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5	
5205279000	Other	8	5	
520528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5	
5205289000	Other	8	5	
520531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0	
5205319000	Other	8	0	
5205321010	Measuring not more than 370.37 decitex but not less than 232.56 decitex(not less than 27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43 metric number), excluding open end yarn	4	0	
5205321090	Other	8	0	
5205329000	Other	8	0	
520533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0	
5205339000	Other	8	0	
520534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5	
5205349000	Other	8	5	
520535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5	
5205359000	Other	8	5	
520541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5	
5205419000	Other	8	5	
520542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5	
5205429000	Other	8	5	
520543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5	
5205439000	Other	8	5	
520544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5	
5205449000	Other	8	5	
520546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5	
5205469000	Other	8	5	
520547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5	
5205479000	Other	8	0	
520548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0	
5205489000	Other	8	0	
520611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0	
5206119000	Other	8	0	
520612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0	
5206129000	Other	8	0	
520613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0	
5206139000	Other	8	0	
520614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0	
5206149000	Other	8	0	
520615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0	
5206159000	Other	8	0	
520621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5	
5206219000	Other	8	5	
520622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5	
5206229000	Other	8	5	
520623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5	
5206239000	Other	8	5	
520624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5	
5206249000	Other	8	5	
520625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5	
5206259000	Other	8	5	
520631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0	
5206319000	Other	8	0	
520632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0	
5206329000	Other	8	0	
520633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0	
5206339000	Other	8	0	
520634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0	
5206349000	Other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520635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0	
5206359000	Other	8	0	
520641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5	
5206419000	Other	8	5	
520642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5	
5206429000	Other	8	5	
520643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5	
5206439000	Other	8	5	
520644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5	
5206449000	Other	8	5	
520645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5	
5206459000	Other	8	5	
520710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0	
5207109000	Other	8	0	
5207901000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8	0	
5207909000	Other	8	3	
5208110000	Plain weave, weighing not more than 100 g/㎡	10	0	
5208120000	Plain weave, weighing more than 100 g/㎡	10	0	
5208130000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10	0	
5208190000	Other fabrics	10	0	
5208210000	Plain weave, weighing not more than 100 g/㎡	10	0	
5208220000	Plain weave, weighing more than 100 g/㎡	10	0	
5208230000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10	0	
5208290000	Other fabrics	10	0	
5208310000	Plain weave, weighing not more than 100 g/㎡	10	0	
5208320000	Plain weave, weighing more than 100 g/㎡	10	0	
5208330000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10	0	
5208390000	Other fabrics	10	0	
5208410000	Plain weave, weighing not more than 100 g/㎡	10	0	
5208420000	Plain weave, weighing more than 100 g/㎡	10	3	
5208430000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10	0	
5208490000	Other fabrics	10	0	
5208510000	Plain weave, weighing not more than 100 g/㎡	10	0	
5208520000	Plain weave, weighing more than 100 g/㎡	10	0	
5208591000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10	0	
5208599000	Other	10	0	
5209110000	Plain weave	10	0	
5209120000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10	0	
5209190000	Other fabrics	10	3	
5209210000	Plain weave	10	0	
5209220000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10	0	
5209290000	Other fabrics	10	0	
5209310000	Plain weave	10	0	
5209320000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10	0	
5209390000	Other fabrics	10	0	
5209410000	Plain weave	10	0	
5209420000	Denim	10	0	
5209430000	Other fabrics of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10	0	
5209490000	Other fabrics	10	0	
5209510000	Plain weave	10	0	
5209520000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10	0	
5209590000	Other fabrics	10	0	
5210110000	Plain weave	10	0	
5210191000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10	0	
5210199000	Other	10	0	
5210210000	Plain weave	10	0	
5210291000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10	0	
5210299000	Other	10	0	
5210310000	Plain weave	1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5210320000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10	0	
5210390000	Other fabrics	10	0	
5210410000	Plain weave	10	0	
5210491000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10	0	
5210499000	Other	10	0	
5210510000	Plain weave	10	0	
5210590000	Other fabrics	10	0	
5211110000	Plain weave	10	0	
5211120000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10	0	
5211190000	Other fabrics	10	0	
5211200000	Bleached	10	0	
5211310000	Plain weave	10	0	
5211320000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10	0	
5211390000	Other fabrics	10	0	
5211410000	Plain weave	10	0	
5211420000	Denim	10	0	
5211430000	Other fabrics of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10	0	
5211490000	Other fabrics	10	0	
5211510000	Plain weave	10	0	
5211520000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10	0	
5211590000	Other fabrics	10	0	
5212110000	Unbleached	10	0	
5212120000	Bleached	10	0	
5212130000	Dyed	10	0	
521214000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10	0	
5212150000	Printed	10	0	
5212210000	Unbleached	10	0	
5212220000	Bleached	10	0	
5212230000	Dyed	10	0	
521224000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10	0	
5212250000	Printed	10	0	
5301100000	Flax, raw or retted	2	3	
5301210000	Broken or scutched	2	3	
5301290000	Other	2	3	
5301301000	Flax tow	2	3	
5301302000	Flax waste	2	3	
5302100000	True hemp, raw or retted	2	3	
5302901000	True hemp, broken, scutched, hackled or otherwise processed, but not spun	2	3	
5302902010	Tow of true hemp	2	3	
5302902020	Waste of true hemp	2	3	
5303101000	Jute	2	0	
5303102000	Other textile bast fibres	2	0	
5303901010	Jute	2	0	
5303901090	Other textile bast fibres	2	0	
5303909010	Tow and waste of jute	2	0	
5303909090	Tow and waste of other textile bast fibres	2	0	
5305001010	Raw	2	0	
5305001090	Other	2	0	
5305002010	Raw	2	0	
5305002090	Other	2	0	
5305003010	Raw	2	0	
5305003090	Other	2	0	
5305009010	Raw	2	0	
5305009090	Other	2	0	
5306101000	Of all flax	8	0	
5306102000	Of mixed	8	0	
5306201000	Of all flax	8	0	
5306202000	Of mixed	8	0	
5307101000	Of jute	8	0	
5307109000	Other	8	0	
5307201000	Of jute	8	0	
5307209000	Other	8	0	
5308100000	Coir yarn	8	0	
5308200000	True hemp yarn	8	0	
5308901000	Ramie yarn	8	0	
5308909000	Other	8	0	
5309110000	Unbleached or bleached	2	0	
5309190000	Other	2	0	
5309210000	Unbleached or bleached	2	0	
5309290000	Other	2	0	
5310101000	Jute fabrics	8	0	
5310109000	Other	8	0	
5310901000	Jute fabrics	8	0	
5310909000	Other	8	0	
5311001000	Of ramie	8	0	
5311002000	Of true hemp	8	0	
5311003000	Of paper yarn	8	0	
5311009000	Other	8	0	
540110100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5401102000	Of polyesters	8	0	
5401103000	Of acrylic polymers	8	0	
5401109000	Other	8	0	
5401201000	Of viscose rayon	8	0	
5401202000	Of cellulose acetate	8	0	
5401209000	Other	8	0	
5402110000	Of aramids	8	0	
5402191011	For tire cord	8	0	
5402191012	For fishing net	8	0	
5402191019	For other	8	0	
5402191021	For tire cord	8	0	
5402191022	For fishing net	8	0	
5402191029	For other	8	0	
5402191090	Other	8	0	
5402199000	Other	8	0	
5402200000	High tenacity yarn of polyesters	8	0	
5402311010	Of nylon 6	8	0	
5402311020	Of nylon 66	8	0	
5402311090	Other	8	0	
5402319000	Other	8	0	
5402321010	Of nylon 6	8	0	
5402321020	Of nylon 66	8	0	
5402321090	Other	8	0	
5402329000	Other	8	0	
5402331000	Of poly trimethylene terephthalate	8	0	
5402339000	Other	8	0	
5402340000	Of polypropylene	8	0	
5402390000	Other	8	0	
5402440000	Elastomeric	8	0	
5402451010	Of nylon 6	8	0	
5402451020	Of nylon 66	8	0	
5402451090	Other	8	0	
5402459000	Other	8	0	
5402461000	Of poly trimethylene terephthalate	8	0	
5402469000	Other	8	0	
5402471000	Of poly trimethylene terephthalate	8	0	
5402479000	Other	8	0	
5402480000	Other, of polypropylene	8	0	
5402491000	Of acrylic polymers	8	0	
5402499000	Other	8	0	
540251000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8	0	
5402520000	Of polyesters	8	0	
5402591000	Of acrylic polymers	8	0	
5402599000	Other	8	0	
540261000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8	3	
5402620000	Of polyesters	8	0	
5402691000	Of acrylic polymers	8	0	
5402692000	Of polyvinyl alcohol	8	0	
5402699000	Other	8	0	
5403100000	High tenacity yarn of viscose rayon	2	0	
5403311000	Textured yarn	2	0	
5403319000	Other	2	0	
5403321000	Textured yarn	2	0	
5403329000	Other	2	0	
5403331000	Textured yarn	8	0	
5403339000	Other	8	0	
5403391000	Textured yarn	8	0	
5403399000	Other	8	0	
5403411000	Textured yarn	2	0	
5403419000	Other	2	0	
5403421000	Textured yarn	8	0	
5403429000	Other	8	0	
5403491000	Textured yarn	8	0	
5403499000	Other	8	0	
5404110000	Elastomeric	8	0	
5404120000	Other, of polypropylene	8	0	
540419100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8	0	
5404192000	Of polyurethane	8	0	
5404193000	Of polyvinyl alcohol	8	0	
5404199000	Other	8	0	
5404901000	Of strip	8	0	
5404909000	Other	8	0	
5405001000	Monofilament	8	0	
5405009000	Other	8	0	
5406001000	Synthetic filament yarn	8	0	
5406002000	Artificial filament yarn	8	0	
540710100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8	0	
5407102000	Of polyesters	8	0	
5407200000	Woven fabrics obtained from strip or the like	8	0	
5407300000	Fabrics specified in note 9 to section XI	8	0	
5407410000	Unbleached or bleached	8	0	
5407420000	Dyed	8	0	
540743000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8	0	
5407440000	Printed	8	0	
5407510000	Unbleached or bleached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5407520000	Dyed	8	0	
540753000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8	0	
5407540000	Printed	8	0	
5407611000	Unbleached or bleached	8	0	
5407612000	Dyed	8	0	
540761300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8	0	
5407614000	Printed	8	0	
5407691000	Unbleached or bleached	8	0	
5407692000	Dyed	8	0	
540769300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8	0	
5407694000	Printed	8	0	
5407711000	Of acrylic polymers	8	0	
5407719000	Other	8	0	
5407721000	Of acrylic polymers	8	0	
5407729000	Other	8	0	
5407731000	Of acrylic polymers	8	0	
5407739000	Other	8	0	
5407741000	Of acrylic polymers	8	0	
5407749000	Other	8	0	
540781100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8	0	
5407812000	Of polyesters	8	0	
5407813000	Of acrylic polymers	8	0	
5407819000	Other	8	0	
540782100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8	0	
5407822000	Of polyesters	8	0	
5407823000	Of acrylic polymers	8	0	
5407829000	Other	8	0	
540783100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8	0	
5407832000	Of polyesters	8	0	
5407833000	Of acrylic polymers	8	0	
5407839000	Other	8	0	
540784100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8	0	
5407842000	Of polyesters	8	0	
5407843000	Of acrylic polymers	8	0	
5407849000	Other	8	0	
540791100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8	0	
5407912000	Of polyesters	8	0	
5407913000	Of acrylic polymers	8	0	
5407919000	Other	8	0	
540792100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8	0	
5407922000	Of polyesters	8	0	
5407923000	Of acrylic polymers	8	0	
5407929000	Other	8	0	
540793100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8	0	
5407932000	Of polyesters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5407933000	Of acrylic polymers	8	0	
5407939000	Other	8	0	
540794100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8	0	
5407942000	Of polyesters	8	0	
5407943000	Of acrylic polymers	8	0	
5407949000	Other	8	0	
5408100000	Woven fabrics obtained from high tenacity yarn of viscose rayon	8	0	
5408210000	Unbleached or bleached	8	0	
5408220000	Dyed	8	0	
540823000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8	0	
5408240000	Printed	8	0	
5408310000	Unbleached or bleached	8	0	
5408320000	Dyed	8	0	
540833000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8	0	
5408340000	Printed	8	0	
550110000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8	0	
5501200000	Of polyesters	8	0	
5501301000	Acrylic	8	0	
5501302000	Modacrylic	8	0	
5501400000	Of polypropylene	8	0	
5501900000	Other	8	0	
5502001000	Of viscose rayon	7.5	0	
5502002010	Less than 44,000 decitex	7.5	0	
5502002020	Not less than 44,000 decitex	7.5	0	
5502009000	Other	7.5	0	
5503111000	Of special section face	8	0	
5503119000	Other	8	0	
5503191000	Of special section face	8	0	
5503199000	Other	8	0	
5503201000	Of special section face	8	0	
5503209010	Of poly trimethylene terephthalate	8	0	
5503209090	Other	8	0	
5503301010	Of special section face	8	0	
5503301020	Of conjugated section face	8	0	
5503301090	Other	8	0	
5503302010	Of special section face	8	0	
5503302020	Of conjugated section face	8	0	
5503302090	Other	8	0	
5503400000	Of polypropylene	8	0	
5503900000	Other	8	0	
5504101000	Of special section face	2	0	
5504102000	Of polynosic section face	2	0	
5504109000	Other	2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5504901000	Of cellulose acetate	8	0	
5504902000	Of lyocell	4	0	
5504909000	Other	8	0	
5505100000	Of synthetic fibres	2	0	
5505200000	Of artificial fibres	2	0	
5506101000	Of special section face	8	0	
5506109000	Other	8	0	
5506201000	Of special section face	8	0	
5506209000	Other	8	0	
5506301010	Of special section face	8	0	
5506301020	Of conjugated section face	8	0	
5506301090	Other	8	0	
5506302010	Of special section face	8	0	
5506302020	Of conjugated section face	8	0	
5506302090	Other	8	0	
5506900000	Other	8	0	
5507001010	Of special section face	8	0	
5507001020	Of polynosic section face	8	0	
5507001090	Other	8	0	
5507002000	Of cellulose acetate	8	0	
5507009000	Other	8	0	
550810100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8	0	
5508102000	Of polyesters	8	0	
5508103000	Acrylic or modacrylic	8	0	
5508109000	Other	8	0	
5508201000	Of viscose rayon	8	0	
5508202000	Of cellulose acetate	8	0	
5508209000	Other	8	0	
5509111000	High tenacity yarn	8	5	
5509119000	Other	8	5	
5509121000	High tenacity yarn	8	5	
5509129000	Other	8	5	
5509211000	High tenacity yarn	8	5	
5509219000	Other	8	5	
5509221000	High tenacity yarn	8	5	
5509229000	Other	8	5	
5509311000	Acrylic	8	5	
5509312000	Modacrylic	8	5	
5509321000	Acrylic	8	5	
5509322000	Modacrylic	8	5	
5509410000	Single yarn	8	5	
5509420000	Multiple (folded) or cabled yarn	8	5	
5509510000	Mixed mainly or solely with artificial staple fibres	8	5	
5509520000	Mixed mainly or solely with wool or fine animal hair	8	5	
5509530000	Mixed mainly or solely with cotton	8	5	
5509590000	Other	8	5	
5509611000	Acrylic	8	5	
5509612000	Modacrylic	8	5	
5509621000	Acrylic	8	5	
5509622000	Modacrylic	8	5	
5509691010	Acrylic	8	5	
5509691020	Modacrylic	8	5	
5509692010	Acrylic	8	5	
5509692020	Modacrylic	8	5	
550991100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8	5	
5509919000	Other	8	5	
550992100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8	5	
5509929000	Other	8	5	
5509990000	Other	8	5	
5510111000	Of viscose rayon	8	5	
5510112000	Of cellulose acetate	8	5	
5510119000	Other	8	5	
5510121000	Of viscose rayon	8	5	
5510122000	Of cellulose acetate	8	5	
5510129000	Other	8	5	
5510201000	Of viscose rayon	8	5	
5510202000	Of cellulose acetate	8	5	
5510209000	Other	8	5	
5510301000	Of viscose rayon	8	5	
5510302000	Of cellulose acetate	8	5	
5510309000	Other	8	5	
5510901000	Of viscose rayon	8	5	
5510902000	Of cellulose acetate	8	5	
5510909000	Other	8	5	
551110100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8	0	
5511102000	Of polyesters	8	0	
5511103000	Acrylic or modacrylic	8	0	
5511109000	Other	8	0	
551120100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8	0	
5511202000	Of polyesters	8	0	
5511203000	Acrylic or modacrylic	8	0	
5511209000	Other	8	0	
5511301000	Of viscose rayon	8	0	
5511302000	Of cellulose acetate	8	0	
5511309000	Other	8	0	
5512110000	Unbleached or bleached	10	0	
5512191000	Dyed	1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551219200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10	0	
5512193000	Printed	10	0	
5512211000	Acrylic	10	0	
5512212000	Modacrylic	10	0	
5512290000	Other	10	0	
551291100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10	0	
5512919000	Other	10	0	
551299100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10	0	
5512999000	Other	10	0	
5513110000	Of polyester staple fibres, plain weave	10	0	
5513120000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of polyester staple fibres	10	0	
5513130000	Other woven fabrics of polyester staple fibres	10	0	
551319100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10	0	
5513192010	Acrylic	10	0	
5513192020	Modacrylic	10	0	
5513199000	Other	10	0	
5513210000	Of polyester staple fibres, plain weave	10	0	
5513231000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of polyester staple fibres	10	0	
5513239000	Other	10	0	
551329100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10	0	
5513292010	Acrylic	10	0	
5513292020	Modacrylic	10	0	
5513299000	Other	10	0	
5513310000	Of polyester staple fibres, plain weave	10	0	
551339100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10	0	
5513392010	Acrylic	10	0	
5513392020	Modacrylic	10	0	
5513399000	Other	10	0	
5513410000	Of polyester staple fibres, plain weave	10	0	
551349100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10	0	
5513492010	Acrylic	10	0	
5513492020	Modacrylic	10	0	
5513499000	Other	10	0	
5514110000	Of polyester staple fibres, plain weave	10	0	
5514120000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of polyester staple fibres	10	0	
551419100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10	0	
5514192010	Acrylic	10	0	
5514192020	Modacrylic	10	0	
5514193000	Other woven fabrics of polyester staple fibres	10	0	
5514199000	Other	10	0	
5514210000	Of polyester staple fibres, plain weave	10	0	
5514220000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of polyester staple fibres	10	0	
5514230000	Other woven fabrics of polyester staple fibres	10	0	
551429100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10	0	
5514292010	Acrylic	10	0	
5514292020	Modacrylic	10	0	
5514299000	Other	10	0	
551430000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10	0	
5514410000	Of polyester staple fibres, plain weave	10	0	
5514420000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of polyester staple fibres	10	0	
5514430000	Other woven fabrics of polyester staple fibres	10	0	
551449100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10	0	
5514492010	Acrylic	10	0	
5514492020	Modacrylic	10	0	
5514499000	Other	10	0	
5515111000	Unbleached or bleached	10	0	
5515119000	Other	10	0	
5515121000	Unbleached or bleached	10	0	
5515129000	Other	10	0	
5515131000	Unbleached or bleached	10	0	
5515139000	Other	10	0	
5515191000	Unbleached or bleached	10	0	
5515199000	Other	10	0	
5515211000	Unbleached or bleached	10	0	
5515219000	Other	10	0	
5515221000	Unbleached or bleached	10	0	
5515229000	Other	10	0	
5515291000	Unbleached or bleached	10	0	
5515299000	Other	1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5515911000	Unbleached or bleached	10	0	
5515919000	Other	10	0	
5515991000	Unbleached or bleached	10	0	
5515999000	Other	10	0	
5516111000	Of viscose rayon	10	0	
5516112000	Of cellulose acetate	10	0	
5516119000	Other	10	0	
5516121000	Of viscose rayon	10	0	
5516122000	Of cellulose acetate	10	0	
5516129000	Other	10	0	
5516131000	Of viscose rayon	10	0	
5516132000	Of cellulose acetate	10	0	
5516139000	Other	10	0	
5516141000	Of viscose rayon	10	0	
5516142000	Of cellulose acetate	10	0	
5516149000	Other	10	0	
5516211000	Of viscose rayon	10	0	
5516212000	Of cellulose acetate	10	0	
5516219000	Other	10	0	
5516221000	Of viscose rayon	10	0	
5516222000	Of cellulose acetate	10	0	
5516229000	Other	10	0	
5516231000	Of viscose rayon	10	0	
5516232000	Of cellulose acetate	10	0	
5516239000	Other	10	0	
5516241000	Of viscose rayon	10	0	
5516242000	Of cellulose acetate	10	0	
5516249000	Other	10	0	
5516311000	Of viscose rayon	10	0	
5516312000	Of cellulose acetate	10	0	
5516319000	Other	10	0	
5516321000	Of viscose rayon	10	0	
5516322000	Of cellulose acetate	10	0	
5516329000	Other	10	0	
5516331000	Of viscose rayon	10	0	
5516332000	Of cellulose acetate	10	0	
5516339000	Other	10	0	
5516341000	Of viscose rayon	10	0	
5516342000	Of cellulose acetate	10	0	
5516349000	Other	10	0	
5516411000	Of viscose rayon	10	0	
5516412000	Of cellulose acetate	10	0	
5516419000	Other	10	0	
5516421000	Of viscose rayon	10	0	
5516422000	Of cellulose acetate	10	0	
5516429000	Other	10	0	
5516431000	Of viscose rayon	10	0	
5516432000	Of cellulose acetate	10	0	
5516439000	Other	10	0	
5516441000	Of viscose rayon	10	0	
5516442000	Of cellulose acetate	10	0	
5516449000	Other	10	0	
5516911000	Of viscose rayon	10	0	
5516912000	Of cellulose acetate	10	0	
5516919000	Other	10	0	
5516921000	Of viscose rayon	10	0	
5516922000	Of cellulose acetate	10	0	
5516929000	Other	10	0	
5516931000	Of viscose rayon	10	0	
5516932000	Of cellulose acetate	10	0	
5516939000	Other	10	0	
5516941000	Of viscose rayon	10	0	
5516942000	Of cellulose acetate	10	0	
5516949000	Other	10	0	
5601100000	Sanitary towels and tampons, napkins and napkin liners for babies and similar sanitary articles, of wadding	8	0	
5601210000	Of cotton	8	0	
5601220000	Of man-made fibres	8	0	
5601290000	Other	8	0	
5601301000	Textile flock	8	0	
5601309000	Other	8	0	
5602101000	Needleloom felt	8	0	
5602102000	Stitch-bonded fiber fabrics	8	0	
5602211000	Piano felt	8	0	
5602219000	Other	8	0	
56022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8	0	
5602900000	Other	8	0	
5603111000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8	0	
5603119000	Other	8	0	
5603121000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8	0	
5603129000	Other	8	0	
5603131000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8	0	
5603139000	Other	8	0	
5603141000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8	0	
5603149000	Other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5603910000	Weighing not more than 25 g/㎡	8	0	
5603920000	Weighing more than 25 g/㎡ but not more than 70 g/㎡	8	0	
5603930000	Weighing more than 70 g/㎡ but not more than 150 g/㎡	8	0	
5603940000	Weighing more than 150 g/㎡	8	0	
5604100000	Rubber thread and cord, textile covered	8	0	
5604901000	Imitation catguts consisting of textile yarn	8	0	
5604902000	High tenacity yarn of polyesters,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or of viscose rayon, impregnated or coated	8	0	
5604909000	Other	8	0	
5605000000	Metallised yarn, whether or not gimped,being textile yarn, or strip or the like of heading 54.04 or 54.05, combined with metal in the form of thread, strip or powder or covered with metal	8	0	
5606001000	Gimped yarn	8	0	
5606002000	Chenille yarn	8	0	
5606003000	Loop wale-yarn	8	0	
5606009000	Other	8	0	
5607210000	Binder or baler twine	10	0	
5607290000	Other	10	0	
5607410000	Binder or baler twine	10	0	
5607490000	Other	10	0	
5607500000	Of other synthetic fibres	10	0	
5607901000	Of jute or other textile bast fibres of heading 53.03	10	0	
5607909000	Other	10	0	
5608111000	Of synthetic fibres	10	0	
5608119000	Other	10	0	
5608191000	Of synthetic fibres	10	0	
5608199000	Other	10	0	
5608901000	Of cotton	10	0	
5608909000	Other	10	0	
5609001000	Of cotton	8	0	
5609002000	Of vegetable fibres, except cotton	8	0	
5609003000	Of man-made fibres	8	0	
5609009000	Other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5701100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0	0	
570190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0	
5702100000	"Kelem", "Schumacks", "Karamanie" and similar hand-woven rugs	10	0	
5702200000	Floor coverings of coconut fibres (coir)	10	0	
5702310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0	0	
5702320000	Of man-made textile materials	10	0	
57023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0	
5702410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0	0	
5702420000	Of man-made textile materials	10	0	
57024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0	
5702500000	Other, not of pile construction, not made up	10	0	
5702910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0	0	
5702920000	Of man-made textile materials	10	0	
57029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0	
5703100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0	0	
570320000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10	0	
5703300000	Of other man-made textile materials	10	0	
570390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0	
5704100000	Tiles, having a maximum surface area of 0.3 ㎡	10	0	
5704900000	Other	10	0	
5705000000	Other carpets and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whether or not made up	10	0	
5801101000	Pile fabrics	13	0	
5801102000	Chenille fabrics	13	0	
5801210000	Uncut weft pile fabrics	13	0	
5801220000	Cut corduroy	13	0	
5801230000	Other weft pile fabrics	13	0	
5801240000	Warp pile fabrics, épinglé (uncut)	13	0	
5801250000	Warp pile fabrics, cut	13	0	
5801260000	Chenille fabrics	13	0	
5801310000	Uncut weft pile fabrics	13	0	
5801320000	Cut corduroy	13	0	
5801330000	Other weft pile fabrics	13	0	
5801340000	Warp pile fabrics, épinglé (uncut)	13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5801350000	Warp pile fabrics, cut	13	0	
5801360000	Chenille fabrics	13	0	
580190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0	
5802110000	Unbleached	8	0	
5802190000	Other	8	0	
5802200000	Terry towelling and similar woven terry fabrics, of other textile materials	8	0	
5802300000	Tufted textile fabrics	8	0	
5803000000	Gauze, other than narrow fabrics of heading 58.06.	8	0	
5804101000	Of silk	13	0	
5804102000	Of cotton	13	0	
5804103000	Of man-made fibres	13	0	
5804109000	Other	13	0	
5804210000	Of man-made fibres	13	0	
5804291000	Of silk	13	0	
5804292000	Of cotton	13	0	
5804299000	Other	13	0	
5804300000	Hand-made lace	13	0	
580500101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8	0	
5805001090	Other	8	0	
5805002000	Needle-worked tapestries	8	0	
5806101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8	0	
5806102000	Of cotton	8	0	
5806103000	Of man-made fibres	8	0	
5806109000	Other	8	0	
5806200000	Other woven fabrics, containing by weight 5 % or more of elastomeric yarn or rubber thread	8	0	
5806310000	Of cotton	8	0	
5806320000	Of man-made fibres	8	0	
5806391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8	0	
5806392000	Of vegetable fibres, except cotton	8	0	
5806399000	Other	8	0	
5806400000	Fabrics consisting of warp without weft assembled by means of an adhesive (bolducs)	8	0	
5807101000	Labels	8	0	
5807109000	Other	8	0	
5807901000	Labels	8	0	
5807909000	Other	8	0	
5808100000	Braids in the piece	8	0	
5808901000	Ornamental trimmings	8	0	
5808909000	Other	8	0	
5809000000	Woven fabrics of metal thread and woven fabrics of metallised yarn of heading 56.05, of a kind used in apparel, as furnishing fabrics or for similar purpos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8	0	
5810100000	Embroidery without visible ground	13	0	
5810910000	Of cotton	13	0	
5810920000	Of man-made fibres	13	0	
58109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0	
5811001000	Of silk	8	0	
5811002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8	0	
5811003000	Of cotton	8	0	
5811004000	Of man-made fibres	8	0	
5811009000	Other	8	0	
5901100000	Textile fabrics coated with gum or amylaceous substances, of a kind used for the outer covers of books or the like	8	0	
5901901000	Tracing cloth	8	0	
5901902000	Prepared painting canvas	8	0	
5901903000	Buckram and similar stiffened textile fabrics	8	0	
590210000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8	0	
5902200000	Of polyesters	8	0	
5902900000	Other	8	0	
5903100000	With poly (vinyl chloride)	10	0	
5903200000	With polyurethane	10	0	
5903900000	Other	10	0	
5904100000	Linoleum	8	0	
5904900000	Other	8	0	
5905000000	Textile wall coverings	8	0	
5906100000	Adhesive tape of a width not exceeding 20 cm	8	0	
5906910000	Knitted or crocheted	8	0	
5906990000	Other	8	0	
5907001000	Textile fabrics coated or impregnated with oil or preparations with a basis of drying oil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5907002000	Painted canvas being theatrical scenery, studio back-cloth or the like	8	0	
5907009000	Other	8	0	
5908001000	Wicks	8	0	
5908009000	Other	8	0	
5909000000	Textile hosepiping and similar textile tubing, with or without lining, armour or accessories of other materials	8	0	
5910000000	Transmission or conveyor belts or belting,of textile material, whether or not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with plastics, or reinforced with metal or other material	8	0	
5911101000	Of narrow fabrics	8	0	
5911109000	Other	8	0	
5911200000	Bolting cloth, whether or not made up	8	0	
5911310000	Weighing less than 650 g/㎡	8	0	
5911320000	Weighing 650 g/㎡ or more	8	0	
5911400000	Straining cloth of a kind used in oil presses or the like, including that of human hair	8	0	
5911900000	Other	8	0	
6001101000	Of cotton	10	0	
6001102000	Of man-made fibres	10	0	
6001109000	Other	10	0	
6001210000	Of cotton	10	0	
6001220000	Of man-made fibres	10	0	
60012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0	
6001910000	Of cotton	10	0	
6001920000	Of man-made fibres	10	0	
60019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0	
6002400000	Containing by weight 5 % or more of elastomeric yarn but not containing rubber thread	10	0	
6002900000	Other	10	0	
6003100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0	0	
6003200000	Of cotton	10	0	
6003300000	Of synthetic fibres	10	0	
6003400000	Of artificial fibres	10	0	
6003900000	Other	10	0	
6004100000	Containing by weight 5 % or more of elastomeric yarn but not containing rubber thread	10	0	
6004900000	Other	10	0	
6005210000	Unbleached or bleached	10	0	
6005220000	Dyed	10	0	
600523000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10	0	
6005240000	Printed	10	0	
6005310000	Unbleached or bleached	10	0	
6005320000	Dyed	10	0	
600533000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10	0	
6005340000	Printed	10	0	
6005410000	Unbleached or bleached	10	0	
6005420000	Dyed	10	0	
600543000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10	0	
6005440000	Printed	10	0	
6005900000	Other	10	0	
6006100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0	0	
6006210000	Unbleached or bleached	10	0	
6006220000	Dyed	10	0	
600623000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10	0	
6006240000	Printed	10	0	
6006310000	Unbleached or bleached	10	0	
6006320000	Dyed	10	0	
600633000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10	0	
6006340000	Printed	10	0	
6006410000	Unbleached or bleached	10	0	
6006420000	Dyed	10	0	
600643000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10	0	
6006440000	Printed	10	0	
6006900000	Other	10	0	
6101200000	Of cotton	13	0	
6101301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101302000	Of artificial fibres	13	0	
610190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0	
6102100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3	0	
6102200000	Of cotton	13	0	
6102301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102302000	Of artificial fibres	13	0	
610290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0	
6103101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3	0	
6103102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103109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0	
6103220000	Of cotton	13	0	
6103230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1032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6103310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3	0	
6103320000	Of cotton	13	0	
6103330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1033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3	
6103410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3	3	
6103420000	Of cotton	13	0	
6103430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1034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0	
6104130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104191000	Of cotton	13	0	
6104199000	Other	13	3	
6104220000	Of cotton	13	0	
6104230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1042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0	
6104310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3	0	
6104320000	Of cotton	13	0	
6104330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1043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3	
6104410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3	0	
6104420000	Of cotton	13	0	
6104430000	Of synthetic fibres	13	3	
6104440000	Of artificial fibres	13	0	
6104491000	Of silk	13	0	
6104499000	Other	13	3	
6104510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3	0	
6104520000	Of cotton	13	3	
6104530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1045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0	
6104610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3	0	
6104620000	Of cotton	13	0	
6104630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1046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0	
6105100000	Of cotton	13	0	
6105201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105202000	Of artificial fibres	13	0	
6105901000	Of silk	13	0	
6105902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3	0	
6105909000	Other	13	0	
6106100000	Of cotton	13	3	
6106201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106202000	Of artificial fibres	13	0	
6106901000	Of silk	13	0	
6106902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3	0	
6106909000	Other	13	3	
6107110000	Of cotton	13	3	
6107121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107122000	Of artificial fibres	13	0	
61071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0	
6107210000	Of cotton	13	0	
6107221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107222000	Of artificial fibres	13	0	
61072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0	
6107910000	Of cotton	13	0	
6107991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3	0	
6107999000	Other	13	0	
6108111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108112000	Of artificial fibres	13	0	
6108191000	Of cotton	13	0	
6108199000	Other	13	0	
6108210000	Of cotton	13	0	
6108221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108222000	Of artificial fibres	13	0	
61082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3	
6108310000	Of cotton	13	0	
6108321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108322000	Of artificial fibres	13	0	
61083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3	
6108910000	Of cotton	13	3	
6108921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108922000	Of artificial fibres	13	0	
6108991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3	0	
6108999000	Other	13	0	
6109101000	T-shirts	13	0	
6109109000	Other	13	0	
6109901010	T-shirts	13	0	
6109901090	Other	13	0	
6109902010	T-shirts	13	0	
6109902090	Other	13	3	
6109903010	T-shirts	13	0	
6109903090	Other	13	0	
6109909010	T-shirts	13	0	
6109909090	Other	13	0	
6110110000	Of wool	13	0	
6110120000	Of Kashmir (cashmere) goats	13	0	
6110190000	Other	13	0	
6110200000	Of cotton	13	3	
6110301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110302000	Of artificial fibres	13	0	
6110901000	Of silk	13	0	
6110909000	Other	13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6111201000	Garments	13	0	
6111202000	Accessories	13	0	
6111301000	Garments	13	3	
6111302000	Accessories	13	0	
6111901000	Garments	13	0	
6111902000	Accessories	13	0	
6112110000	Of cotton	13	0	
6112120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1121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0	
6112201000	Of man-made fibres	13	0	
6112209000	Other	13	0	
6112310000	Of synthetic fibres	13	3	
61123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0	
6112410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1124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0	
6113001000	Of heading 59.03	13	0	
6113002000	Of heading 59.06	13	0	
6113003000	Of heading 59.07	13	0	
6114200000	Of cotton	13	0	
6114301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114302000	Of artificial fibres	13	3	
6114901000	Of silk	13	0	
6114909000	Other	13	3	
6115100000	Graduated compression hosiery (for example, stockings for varicose veins)	13	0	
6115210000	Of synthetic fibres,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67 decitex	13	0	
6115220000	Of synthetic fibres, measuring per single yarn 67 decitex or more	13	0	
61152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0	
6115301000	Of man-made fibres	13	0	
6115309000	Other	13	0	
6115940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3	0	
6115950000	Of cotton	13	0	
6115960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1159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0	
6116100000	Impregnated, coated or covered with plastics or rubber	8	0	
6116910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8	0	
6116921000	Working gloves	8	0	
6116929000	Other	8	3	
6116930000	Of synthetic fibres	8	0	
61169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8	0	
6117101000	Of silk	13	0	
6117102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3	0	
6117103000	Of cotton	13	0	
6117104000	Of man-made fibres	13	0	
6117109000	Other	13	0	
6117801000	Ties, bow ties and cravats	13	0	
6117809000	Other	13	0	
6117900000	Parts	13	0	
6201110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3	0	
6201120000	Of cotton	13	0	
6201131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201132000	Of artificial fibres	13	0	
62011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0	
6201910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3	0	
6201920000	Of cotton	13	0	
6201931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201932000	Of artificial fibres	13	0	
62019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0	
6202110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3	0	
6202120000	Of cotton	13	0	
6202131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202132000	Of artificial fibres	13	0	
62021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3	
6202910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3	0	
6202920000	Of cotton	13	0	
6202931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202932000	Of artificial fibres	13	0	
62029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0	
6203110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3	0	
6203120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203190000	Of other textile fibres	13	0	
6203220000	Of cotton	13	0	
6203230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203291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3	0	
6203299000	Other	13	0	
6203310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3	0	
6203320000	Of cotton	13	0	
6203330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2033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0	
6203410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3	0	
6203421000	Of denim, including blue jeans	13	0	
6203429000	Other	13	0	
6203430000	Of synthetic fibres	13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62034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0	
6204110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3	0	
6204120000	Of cotton	13	0	
6204130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204191000	Of silk	13	0	
6204199000	Other	13	3	
6204210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3	0	
6204220000	Of cotton	13	0	
6204230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204291000	Of silk	13	0	
6204299000	Other	13	3	
6204310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3	0	
6204320000	Of cotton	13	0	
6204330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204391000	Of silk	13	0	
6204399000	Other	13	3	
6204410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3	3	
6204420000	Of cotton	13	3	
6204430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204440000	Of artificial fibres	13	3	
6204491000	Of silk	13	0	
6204499000	Other	13	3	
6204510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3	0	
6204520000	Of cotton	13	0	
6204530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204591000	Of silk	13	0	
6204599000	Other	13	0	
6204610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3	0	
6204621000	Of denim, including blue jeans	13	0	
6204629000	Other	13	0	
6204630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204691000	Of silk	13	0	
6204699000	Other	13	0	
6205200000	Of cotton	13	0	
6205301000	Of synthetic fibres	13	3	
6205302000	Of artificial fibres	13	0	
6205901000	Of silk	13	0	
6205902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3	3	
6205909000	Other	13	0	
6206100000	Of silk or silk waste	13	0	
6206200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3	0	
6206300000	Of cotton	13	0	
6206401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206402000	Of artificial fibres	13	3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620690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0	
6207110000	Of cotton	13	0	
6207191000	Of man-made fibres	13	0	
6207199000	Other	13	0	
6207210000	Of cotton	13	0	
6207221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207222000	Of artificial fibres	13	0	
62072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0	
6207910000	Of cotton	13	0	
6207991000	Of silk	13	0	
6207992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3	3	
6207993010	Of synthetic fibres	13	0	
6207993020	Of artificial fibres	13	0	
6207999000	Other	13	0	
6208111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208112000	Of artificial fibres	13	0	
6208191000	Of silk	13	0	
6208192000	Of cotton	13	0	
6208199000	Other	13	0	
6208210000	Of cotton	13	0	
6208221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208222000	Of artificial fibres	13	0	
62082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0	
6208910000	Of cotton	13	0	
6208921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208922000	Of artificial fibres	13	0	
6208991000	Of silk	13	0	
6208992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3	3	
6208999000	Other	13	3	
6209201000	Garments	13	0	
6209202000	Accessories	13	0	
6209301000	Garments	13	0	
6209302000	Accessories	13	0	
620990101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3	0	
6209901090	Other	13	3	
6209902000	Accessories	13	0	
6210101000	Of fabrics of heading 56.02	13	0	
6210102000	Of fabrics of heading 56.03	13	0	
6210201000	Of fabrics of heading 59.03	13	0	
6210202000	Of fabrics of heading 59.06	13	0	
6210203000	Of fabrics of heading 59.07	13	0	
6210301000	Of fabrics of heading 59.03	13	0	
6210302000	Of fabrics of heading 59.06	13	0	
6210303000	Of fabrics of heading 59.07	13	0	
6210401000	Of fabrics of heading 59.03	13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6210402000	Of fabrics of heading 59.06	13	0	
6210403000	Of fabrics of heading 59.07	13	0	
6210501000	Of fabrics of heading 59.03	13	0	
6210502000	Of fabrics of heading 59.06	13	0	
6210503000	Of fabrics of heading 59.07	13	0	
6211111000	Of man-made fibres	13	0	
6211119000	Other	13	3	
6211121000	Of man-made fibres	13	0	
6211129000	Other	13	0	
6211201000	Of man-made fibres	13	0	
6211209000	Other	13	0	
6211321000	Judo, taekwondo and other oriental martial arts uniforms	13	0	
6211329000	Other	13	0	
6211331000	Of synthetic fibres	13	3	
6211332000	Of artificial fibres	13	0	
6211391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3	0	
6211399000	Other	13	3	
6211410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3	0	
6211421000	Judo, taekwondo and other oriental martial arts uniforms	13	0	
6211429000	Other	13	0	
6211431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211432000	Of artificial fibres	13	0	
62114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0	
6212101000	Of cotton	13	0	
6212102000	Of man-made fibres	13	3	
6212109000	Other	13	0	
6212201000	Of cotton	13	0	
6212202000	Of man-made fibres	13	3	
6212209000	Other	13	0	
6212300000	Corselettes	13	0	
6212900000	Other	13	3	
6213200000	Of cotton	8	0	
621390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8	0	
6214100000	Of silk or silk waste	8	0	
6214200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8	0	
6214300000	Of synthetic fibres	8	0	
6214400000	Of artificial fibres	8	0	
621490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8	0	
6215100000	Of silk or silk waste	8	0	
6215200000	Of man-made fibres	8	0	
621590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8	0	
6216001000	Impregnated, coated or covered with plastics or rubber	8	0	
6216009000	Other	8	0	
6217100000	Accessories	13	0	
6217900000	Parts	13	0	
6301100000	Electric blankets	10	0	
6301200000	Blankets (other than electric blankets) and travelling rugs,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0	3	
6301300000	Blankets (other than electric blankets) and travelling rugs, of cotton	10	0	
6301400000	Blankets (other than electric blankets) and travelling rugs, of synthetic fibers	10	0	
6301900000	Other blankets and travelling rugs	10	0	
6302101000	Of cotton	13	0	
6302109000	Other	13	0	
6302210000	Of cotton	13	0	
6302220000	Of man-made fibres	13	0	
63022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0	
6302310000	Of cotton	13	0	
6302320000	Of man-made fibres	13	0	
63023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0	
6302400000	Table linen, knitted or crocheted	13	0	
6302510000	Of cotton	13	0	
6302530000	Of man-made fibres	13	0	
63025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0	
6302600000	Toilet linen and kitchen linen, of terry towelling or similar terry fabrics, of cotton	13	0	
6302910000	Of cotton	13	0	
6302930000	Of man-made fibres	13	0	
63029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0	
6303120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303191000	Of cotton	13	0	
6303199000	Other	13	0	
6303910000	Of cotton	13	0	
6303920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3039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0	
6304110000	Knitted or crocheted	13	0	
6304190000	Other	13	0	
6304910000	Knitted or crocheted	13	0	
6304920000	Not knitted or crocheted,of cotton	13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6304930000	Not knitted or crocheted, of synthetic fibres	13	0	
6304990000	Not knitted or crocheted,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0	
6305100000	Of jute or of other textile bast fibres of heading 53.03	8	0	
6305200000	Of cotton	8	3	
6305320000	Flexible intermediate bulk containers	8	0	
6305330000	Other, of polyethylene or polypropylene strip or the like	8	0	
6305390000	Other	8	0	
630590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8	0	
6306120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3061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0	
6306220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306290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3	
6306300000	Sails	13	0	
6306401000	Of cotton	13	0	
6306409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3	0	
6306910000	Of cotton	13	0	
6306991000	Of synthetic fibres	13	0	
6306999000	Other	13	0	
6307100000	Floor-cloths, dish-cloths, dusters and similar cleaning cloths	10	0	
6307200000	Life-jackets and life-belts	10	0	
6307901000	Footwear lace	10	0	
6307902000	Cloth wrappers	10	0	
6307903000	Dress patterns	10	0	
6307909000	Other	10	0	
6308000000	Sets consisting of woven fabric and yarn, whether or not with accessories, for making up into rugs, tapestries, embroidered table cloths or serviettes, or similar textile articles, put up in packings for retail sale	13	0	
6309000000	Worn clothing and other worn articles	8	0	
6310100000	Sorted	8	0	
6310900000	Other	8	0	
6401100000	Footwear incorporating a protective metal toe-cap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6401921000	Ski - boots	8	0	
6401929010	Of rubber	8	0	
6401929090	Other	8	0	
6401991010	Of rubber	8	0	
6401991090	Other	8	0	
6401999000	Other	8	0	
6402120000	Ski-boots, cross-country ski footwear and snowboard boots	13	0	
6402190000	Other	13	0	
6402200000	Footwear with upper straps or thongs assembled to the sole by means of plugs	13	0	
6402911000	Footwear, protective against cold	13	0	
6402912000	Tennis shoes, basketball shoes, gym shoes, training shoes and the like	13	0	
6402919000	Other	13	0	
6402991000	Sandals or similar footwear, produced in one piece by moulding	13	0	
6402992000	Tennis shoes, basketball shoes, gym shoes, training shoes and the like	13	0	
6402999000	Other	13	0	
6403120000	Ski-boots, cross-country ski footwear and snowboard boots	13	0	
6403190000	Other	13	0	
6403200000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leather, and uppers which consist of leather straps across the instep and around the big toe	13	0	
6403400000	Other footwear, incorporating a protective metal toe-cap	13	0	
6403511000	Dress shoes	13	0	
6403519000	Other	13	0	
6403591000	Dress shoes	13	0	
6403599000	Other	13	0	
6403911000	Dress shoes	13	0	
6403912000	Mountaineering footwear	13	0	
6403913000	Lace-boots	13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6403914000	Tennis shoes, basketball shoes, gym shoes, training shoes and the like	13	0	
6403919000	Other	13	3	
6403991000	Dress shoes	13	0	
6403992000	Mountaineering footwear	13	0	
6403993000	Lace-boots	13	0	
6403994000	Tennis shoes, basketball shoes, gym shoes, training shoes and the like	13	0	
6403999000	Other	13	0	
6404110000	Sports footwear; tennis shoes, basketball shoes, gym shoes, training shoes and the like	13	0	
6404191000	Slippers	13	0	
6404199000	Other	13	0	
6404201000	Slippers	13	0	
6404209000	Other	13	0	
6405100000	With uppers of leather or composition leather	13	0	
6405200000	With uppers of textile materials	13	0	
6405900000	Other	13	0	
6406101000	Uppers	8	0	
6406102000	Parts	8	0	
6406201000	Outer soles	8	0	
6406202000	Heels	8	0	
6406910000	Of wood	8	0	
6406991000	Removable in-soles	8	0	
6406992000	Heel cushion	8	0	
6406993000	Gaiters	8	0	
6406994000	Leggings	8	0	
6406999000	Other	8	0	
6501000000	Hat-forms, hat bodies and hoods of felt, neither blocked to shape nor with made brims; plateaux and manchons (including slit manchons), of felt	8	0	
6502000000	Hat-shapes, plaited or made by assembling strips of any material, neither blocked to shape, nor with made brims, nor lined, nor trimmed	8	0	
6504000000	Hats and other headgear, plaited or made by assembling strips of any material, whether or not lined or trimmed	8	0	
6505100000	Hair-nets	8	0	
6505901010	Of synthetic fibres	8	0	
6505901090	Of other fibres	8	0	
6505902010	Sports cap	8	0	
6505902020	Berets	8	0	
6505902090	Other	8	0	
6505909000	Other	8	0	
6506100000	Safety headgear	8	0	
6506910000	Of rubber or of plastics	8	0	
6506991000	Of leather	8	0	
6506992000	Of metal	8	0	
6506999000	Other	8	0	
6507000000	Head-bands, lining, covers, hat foundations, hat frames, peaks and chinstraps, for headgear	8	0	
6601100000	Garden or similar umbrellas	13	0	
6601910000	Having a telescopic shaft	13	0	
6601991000	Walking-stick umbrellas	13	0	
6601992000	Sun umbrellas	13	0	
6601999000	Other	13	0	
6602001000	Walking-sticks	8	0	
6602002000	Seat-sticks	8	0	
6602003000	Whips, riding-crops	8	0	
6602009000	Other	8	0	
6603200000	Umbrella frames, including frames mounted on shafts (sticks)	13	0	
6603900000	Other	13	0	
6701000000	Skins and other parts of birds with their feathers or down, feathers, parts of feathers, down and articles thereof (other than goods of heading 05.05 and worked quills and scapes)	8	0	
6702100000	Of plastics	8	0	
6702901000	Of woven fabrics	8	0	
6702902000	Of paper	8	0	
6702909000	Other	8	0	
6703001010	Washed, dressed, thinned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6703001090	Other	8	0	
6703009000	Other	8	0	
6704110000	Complete wigs	8	0	
6704191000	Partial wigs	8	0	
6704192000	False beards	8	0	
6704193000	False eyebrows	8	0	
6704194000	False eyelashes	8	0	
6704199000	Other	8	0	
6704201000	Complete wigs	8	0	
6704202000	Partial wigs	8	0	
6704203000	False beards	8	0	
6704204000	False eyebrows	8	0	
6704205000	False eyelashes	8	0	
6704209000	Other	8	0	
6704900000	Of other materials	8	0	
6801000000	Setts,curbstones and flagstones, of natural stone (except slate)	8	0	
6802100000	Tiles, cubes and similar articles, whether or not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the largest surface area of which is capable of being enclosed in a square the side of which is less than 7 cm; artificially coloured granules, chippings and powder	8	0	
6802211000	Marble	8	0	
6802212000	Travertine	8	0	
6802213000	Alabaster	8	0	
6802230000	Granite	8	7	
6802291000	Other calcareous stone	8	0	
6802299000	Other	8	7	
6802911000	Marble	8	0	
6802912000	Travertine	8	0	
6802913000	Alabaster	8	0	
6802920000	Other calcareous stone	8	0	
6802930000	Granite	8	7	
6802990000	Other stone	8	7	
6803001000	Inkstone	8	7	
6803009000	Other	8	7	
6804100000	Millstones and grindstones for milling, grinding or pulping	8	0	
6804210000	Of agglomerated synthetic or natural diamond	8	5	
6804220000	Of other agglomerated abrasives or of ceramics	8	3	
6804230000	Of natural stone	8	0	
6804300000	Hand sharpening or polishing stones	8	0	
6805100000	On a base of woven textile fabric only	8	0	
6805200000	On a base of paper or paperboard only	8	0	
6805300000	On a base of other materials	8	0	
6806101000	Slag wool	8	0	
6806102000	Rock wool	8	0	
6806103000	Ceramic fibre	8	0	
6806109000	Other	8	0	
6806201000	Exfoliated vermiculite	8	0	
6806202000	Expanded clays	8	0	
6806204000	Expanded perlite	8	0	
6806209000	Other	8	0	
6806901000	Fire proofing material	8	0	
6806909000	Other	8	0	
6807100000	In rolls	8	0	
6807900000	Other	8	0	
6808000000	Panels, boards, tiles, blocks and similar articles of vegetable fibre, of straw or of shavings, chips, particles, sawdust or other waste, of wood, agglomerated with cement, plaster or other mineral binders	8	0	
6809110000	Faced or reinforced with paper or paperboard only	8	3	
6809190000	Other	8	3	
6809900000	Other articles	8	3	
6810111000	Blocks	8	0	
6810112000	Bricks	8	3	
6810191000	Tiles	8	0	
6810192000	Flagstones	8	0	
6810193000	Roofing tiles	8	0	
6810199000	Other	8	0	
6810910000	Prefabricated structural components for building or civil engineering	8	0	
6810991000	Beams and girders	8	0	
6810992000	Pile	8	0	
6810993000	Electric pole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6810994000	Railway sleepers	8	0	
6810995000	Pipes	8	0	
6810999000	Other	8	0	
6811401010	For roofs, ceilings, walls or floors	8	0	
6811401090	Other	8	0	
6811402010	For roofs, ceilings, walls or floors	8	0	
6811402090	Other	8	0	
6811403000	Tubes, pipes and tube or pipe fittings	8	0	
6811409010	For roofs, ceilings, walls or floors	8	0	
6811409090	Other	8	0	
6811810000	Corrugated sheets	8	0	
6811820000	Other sheets, panels, tiles and similar articles	8	0	
6811830000	Tubes, pipes and tube or pipe fittings	8	0	
6811890000	Other articles	8	0	
6812801000	Clothing, clothing accessories, footwear and headgear	8	0	
6812802000	Paper, millboard and felt	8	0	
6812803000	Compressed asbestos fibre jointing, in sheets or rolls	8	0	
6812809000	Other	8	0	
6812910000	Clothing, clothing accessories, footwear and headgear	8	0	
6812920000	Paper, millboard and felt	8	0	
6812930000	Compressed asbestos fibre jointing, in sheets or rolls	8	0	
6812990000	Other	8	0	
6813201010	For automobiles	8	0	
6813201090	Other	8	0	
6813202010	For automobiles	8	0	
6813202090	Other	8	0	
6813209010	For automobiles	8	0	
6813209090	Other	8	0	
6813810000	Brake linings and pads	8	3	
6813891000	Clutch facing	8	0	
6813899000	Other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6814100000	Plates, sheets and strips of agglomerated or reconstituted mica, whether or not on a support	8	0	
6814900000	Other	8	0	
6815101000	Non-electrical articles of graphite	8	0	
6815102000	Carbon fibre	8	0	
6815109000	Other	8	0	
6815200000	Articles of peat	8	0	
6815910000	Containing magnesite, dolomite or chromite	8	0	
6815990000	Other	8	7	
6901001000	Bricks	8	0	
6901002000	Blocks	8	3	
6901003000	Tiles	8	0	
6901009010	Slabs and panels	8	0	
6901009090	Other	8	0	
6902100000	Containing by weight, singly or together, more than 50 % of the elements Mg, Ca or Cr, expressed as MgO, CaO or Cr2O3	8	0	
6902200000	Containing by weight more than 50 % of alumina (Al2O3), of silica(SiO2) or of a mixture or compound of these products	8	0	
6902901000	Based upon silicon carbide or zircon	8	0	
6902909000	Other	8	3	
6903101000	Retorts	8	0	
6903102010	For furnaces for production of semiconductor wafers	3	0	
6903102090	Other	8	0	
6903103000	Reaction vessels	8	0	
6903104000	Muffles	8	0	
6903105000	Nozzles	8	0	
6903106000	Plugs	8	0	
6903107000	Tubes and pipes	8	0	
6903108000	Bars and rods	8	0	
6903109000	Other	8	0	
6903201000	Retorts	8	0	
6903202000	Crucibles	8	0	
6903203000	Reaction vessels	8	0	
6903204000	Muffles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6903205000	Nozzles	8	0	
6903206000	Plugs	8	0	
6903207000	Tubes and pipes	8	0	
6903208000	Bars and rods	8	0	
6903209000	Other	8	0	
6903901000	Based upon silicon carbide or zircon	8	0	
6903909010	Retorts	8	0	
6903909020	Crucibles	8	0	
6903909030	Reaction vessels	8	0	
6903909040	Muffles	8	0	
6903909050	Nozzles	8	0	
6903909060	Plugs	8	0	
6903909070	Tubes and pipes	8	0	
6903909080	Bars and rods	8	0	
6903909090	Other	8	0	
6904100000	Building bricks	8	3	
6904900000	Other	8	0	
6905100000	Roofing tiles	8	0	
6905901000	Chimney pots, cowls and chimney liners	8	0	
6905902000	Architectural ornaments	8	0	
6905909000	Other	8	0	
6906001000	Pipes, conduits and guttering	8	0	
6906002000	Pipe fittings	8	0	
6907101000	Of porcelain or china	8	3	
6907109000	Other	8	3	
6907901000	Of porcelain or china	8	3	
6907909000	Other	8	3	
6908101000	Of porcelain or china	8	3	
6908109000	Other	8	3	
6908901000	Of porcelain or china	8	3	
6908909000	Other	8	3	
6909110000	Of porcelain or china	8	0	
6909120000	Articles having a hardness equivalent to 9 or more on the Mohs scale	8	0	
6909190000	Other	8	0	
6909900000	Other	8	3	
6910101000	Wash basins	8	3	
6910102000	Baths	8	3	
6910103000	Water closet pans	8	3	
6910104000	Urinals	8	3	
6910109000	Other	8	3	
6910900000	Other	8	3	
6911101000	Coffee sets or tea sets	8	3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6911102000	Bowls and dishes	8	3	
6911109000	Other	8	3	
6911901000	Household articles	8	3	
6911902000	Toilet articles	8	3	
6911909000	Other	8	3	
6912001010	Coffee sets or tea sets	8	3	
6912001020	Bowls and dishes	8	3	
6912001090	Other	8	3	
6912002000	Household articles	8	3	
6912003000	Toilet articles	8	3	
6912009000	Other	8	3	
6913101000	Statues, statuettes and busts	8	3	
6913109020	Ornamental tablewares	8	3	
6913109090	Other	8	3	
6913901000	Statues, statuettes and busts	8	3	
6913909020	Ornamental tablewares	8	3	
6913909090	Other	8	3	
6914101000	Flower pots	8	3	
6914109000	Other	8	3	
6914901000	Flower pots	8	3	
6914909000	Other	8	3	
7001001000	Mass	5	0	
7001002000	Waste and scrap, cullet	3	0	
7002100000	Balls	8	0	
7002201000	For the manufacture of quartz wares for semiconductor	3	0	
7002209000	Other	8	0	
7002311000	For the manufacture of quartz wares for semiconductor	3	0	
7002319000	Other	8	0	
7002320000	Of other glass having a linear coefficient of expansion not exceeding 5×10-6 per Kelvin within a temperature range of 0°C to 300°C	8	0	
7002390000	Other	8	0	
7003121000	Not more than 2 ㎜ in thickness	8	0	
7003122000	More than 2 ㎜ but not more than 3 ㎜ in thickness	8	0	
7003123000	More than 3 ㎜ but not more than 4 ㎜ in thickness	8	0	
7003124000	More than 4 ㎜ but not more than 5 ㎜ in thickness	8	0	
7003125000	More than 5 ㎜ but not more than 6 ㎜ in thickness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7003126000	More than 6 ㎜ but not more than 8 ㎜ in thickness	8	0	
7003127000	More than 8 ㎜ in thickness	8	0	
7003191000	Not more than 2 ㎜ in thickness	8	0	
7003192000	More than 2 ㎜ but not more than 3 ㎜ in thickness	8	0	
7003193000	More than 3 ㎜ but not more than 4 ㎜ in thickness	8	0	
7003194000	More than 4 ㎜ but not more than 5 ㎜ in thickness	8	0	
7003195000	More than 5 ㎜ but not more than 6 ㎜ in thickness	8	0	
7003196000	More than 6 ㎜ but not more than 8 ㎜ in thickness	8	0	
7003197000	More than 8 ㎜ in thickness	8	0	
7003200000	Wired sheets	8	0	
7003300000	Profiles	8	0	
7004201000	Not more than 2 ㎜ in thickness	8	0	
7004202000	More than 2 ㎜ but not more than 3 ㎜ in thickness	8	0	
7004203000	More than 3 ㎜ but not more than 4 ㎜ in thickness	8	0	
7004204000	More than 4 ㎜ but not more than 5 ㎜ in thickness	8	0	
7004205000	More than 5 ㎜ but not more than 6 ㎜ in thickness	8	0	
7004206000	More than 6 ㎜ but not more than 8 ㎜ in thickness	8	0	
7004207000	More than 8 ㎜ in thickness	8	0	
7004901000	Not more than 2 ㎜ in thickness	8	0	
7004902000	More than 2 ㎜ but not more than 3 ㎜ in thickness	8	0	
7004903000	More than 3 ㎜ but not more than 4 ㎜ in thickness	8	0	
7004904000	More than 4 ㎜ but not more than 5 ㎜ in thickness	8	0	
7004905000	More than 5 ㎜ but not more than 6 ㎜ in thickness	8	0	
7004906000	More than 6 ㎜ but not more than 8 ㎜ in thickness	8	0	
7004907000	More than 8 ㎜ in thickness	8	0	
7005101010	Not more than 4 mm in thickness	8	3	
7005101020	More than 4 mm but not more than 6 mm in thickness	8	3	
7005101030	More than 6 mm but not more than 8 mm in thickness	8	3	
7005101040	More than 8 mm in thickness	8	3	
7005102010	Not more than 4 mm in thickness	8	3	
7005102020	More than 4 mm but not more than 6 mm in thickness	8	3	
7005102030	More than 6 mm but not more than 8 mm in thickness	8	3	
7005102040	More than 8 mm in thickness	8	3	
7005109010	Not more than 4 mm in thickness	8	3	
7005109020	More than 4 mm but not more than 6 mm in thickness	8	3	
7005109030	More than 6 mm but not more than 8 mm in thickness	8	3	
7005109040	More than 8 mm in thickness	8	3	
7005211000	Not more than 2 ㎜ in thickness	8	3	
7005212000	More than 2 ㎜ but not more than 3 ㎜ in thickness	8	3	
7005213000	More than 3 ㎜ but not more than 4 ㎜ in thickness	8	3	
7005214000	More than 4 ㎜ but not more than 5 ㎜ in thickness	8	3	
7005215000	More than 5 ㎜ but not more than 6 ㎜ in thickness	8	3	
7005216000	More than 6 ㎜ but not more than 8 ㎜ in thickness	8	3	
7005217010	Not more than 10 mm in thickness	8	3	
7005217020	More than 10 mm but not more than 12 mm in thickness	8	3	
7005217030	More than 12 mm in thickness	8	3	
7005291010	For PDP (plasma display panel)	4	0	
7005291020	For blank mask used in the manufacture of semiconductor, or of FPD (flat panel display)	3	0	
7005291030	For 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splay)	4	0	
7005291091	Clear and transparent glass	8	3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7005291092	Extra clear low-iron glass	8	3	
7005291099	Other	8	3	
7005292010	For PDP (plasma display panel)	4	0	
7005292020	For blank mask used in the manufacture of semiconductor, or of FPD (flat panel display)	3	0	
7005292030	For 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splay)	4	0	
7005292091	Clear and transparent glass	8	3	
7005292092	Extra clear low-iron glass	8	3	
7005292099	Other	8	3	
7005293010	Clear and transparent glass	8	3	
7005293020	Extra clear low-iron glass	8	3	
7005293090	Other	8	3	
7005294010	Clear and transparent glass	8	3	
7005294020	Extra clear low-iron glass	8	3	
7005294090	Other	8	3	
7005295010	Clear and transparent glass	8	3	
7005295020	Extra clear low-iron glass	8	3	
7005295090	Other	8	3	
7005296010	Clear and transparent glass	8	3	
7005296020	Extra clear low-iron glass	8	3	
7005296090	Other	8	3	
7005297010	Clear and transparent glass	8	3	
7005297020	Extra clear low-iron glass	8	3	
7005297090	Other	8	3	
7005298010	Clear and transparent glass	8	3	
7005298020	Extra clear low-iron glass	8	3	
7005298090	Other	8	3	
7005299010	Clear and transparent glass	8	3	
7005299020	Extra clear low-iron glass	8	3	
7005299090	Other	8	3	
7005300000	Wired glass	8	3	
7006001000	For PDP (plasma display panel)	4	0	
7006002000	For blank mask used in the manufacture of semiconductor, or of FPD (flat panel display)	3	0	
7006003000	For 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splay)	4	0	
7006009000	Other	8	0	
7007111000	Not more than 8 mm in thickness	8	0	
7007112000	More than 8 mm in thickness	8	3	
7007191000	Not more than 8 mm in thickness	8	3	
7007192000	More than 8 mm in thickness	8	3	
7007211000	Not more than 12 mm in total thickness, including film thickness	8	0	
7007212000	More than 12 mm in total thickness, including film thickness	8	3	
7007291000	Not more than 12 mm in total thickness, including film thickness	8	3	
7007292000	More than 12 mm in total thickness, including film thickness	8	3	
7008000000	Multiple-walled insulating units of glass	8	3	
7009100000	Rear-view mirrors for vehicles	8	0	
7009910000	Unframed	8	3	
7009920000	Framed	8	3	
7010100000	Ampoules	8	0	
7010200000	Stoppers, lids and other closures	8	0	
7010900000	Other	8	0	
7011100000	For electric lighting	8	0	
7011201000	Color	8	0	
7011209000	Other	8	0	
7011900000	Other	8	0	
7013100000	Of glass-ceramics	8	0	
7013220000	Of lead crystal	8	0	
7013280000	Other	8	0	
7013330000	Of lead crystal	8	0	
7013370000	Other	8	0	
7013410000	Of lead crystal	8	0	
7013420000	Of glass having a linear coefficient of expansion not exceeding 5 x 10-6 per Kelvin within a temperature range of 0°C to 300°C	8	0	
7013490000	Other	8	0	
7013910000	Of lead crystal	8	0	
7013990000	Other	8	0	
7014001000	Of sealed beam lamp	8	0	
7014009010	Signalling glassware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7014009020	Optical elements of glass	8	0	
7015100000	Glasses for corrective spectacles	8	0	
7015901000	For sun glasses	8	0	
7015902000	Clock or watch glasses and the like	8	0	
7015909000	Other	8	0	
7016100000	Glass cubes and other glass smallwares, whether or not on a backing, for mosaics or similar decorative purposes	8	0	
7016901000	Paving blocks, slabs, bricks, squares, tiles and other articles of pressed or moulded glass, whether or not wired, of a kind used for building or construction purposes	8	0	
7016909010	Leaded lights	8	0	
7016909020	Stained glass	8	0	
7016909090	Other	8	0	
7017100000	Of fused quartz or other fused silica	8	0	
7017200000	Of other glass having a linear coefficient of expansion not exceeding 5 x 10-6 per Kelvin within a temperature range of 0°C to 300°C	8	0	
7017900000	Other	8	0	
7018101000	Beads	8	0	
7018102000	Imitation pearls	8	0	
7018103000	Imitation precious and semi-precious stones	8	0	
7018104000	Imitation coral	8	0	
7018109000	Other	8	0	
7018200000	Glass microspheres not exceeding 1 mm in diameter	8	0	
7018901000	Glass eyes other than prosthetic articles	8	0	
7018909000	Other	8	0	
7019110000	Chopped strands, of a length of not more than 50 mm	8	0	
7019120000	Rovings	8	0	
7019190000	Other	8	0	
7019310000	Mats	8	0	
7019320000	Thin sheets (voiles)	8	0	
7019390000	Other	8	3	
7019400000	Woven fabrics of rovings	8	3	
7019510000	Of a width not exceeding 30 cm	8	0	
7019520000	Of a width exceeding 30 cm, plain weave, weighing less than 250 g/m², of filaments measuring per single yarn not more than 136 tex	8	0	
7019590000	Other	8	0	
7019901000	Glass wool	8	0	
7019909000	Other	8	0	
7020001011	Quartz reactor tubes and holders designed for insertion into diffusion and oxidation furnaces for production of semiconductor wafers	0	0	
7020001012	Quartz crucibles for furnace of production of semiconductor wafers	3	0	
7020001013	For the manufacture of quartz wares for semiconductor	3	0	
7020001019	Other	8	0	
7020001090	Other	8	0	
7020009000	Other	8	0	
7101101000	Unworked	8	0	
7101102000	Worked	8	0	
7101210000	Unworked	8	3	
7101220000	Worked	8	3	
7102100000	Unsorted	1	0	
7102210000	Unworked or simply sawn, cleaved or bruted	1	0	
7102290000	Other	5	0	
7102310000	Unworked or simply sawn, cleaved or bruted	1	0	
7102390000	Other	5	0	
7103100000	Unworked or simply sawn or roughly shaped	1	0	
7103911000	Industrial	5	0	
7103919010	Rubies	5	0	
7103919020	Sapphires	5	0	
7103919030	Emeralds	5	0	
7103991000	Industrial	5	0	
7103999010	Opal	5	0	
7103999020	Jade	5	0	
7103999030	Chalcedony	5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7103999040	Rocky crystal	5	0	
7103999090	Other	5	3	
7104100000	Piezo-electric quartz	5	0	
7104201000	Diamonds	5	0	
7104209000	Other	5	0	
7104901010	Diamonds	5	0	
7104901020	Artificial crystal	5	0	
7104901090	Other	5	0	
7104909010	Diamonds	5	0	
7104909090	Other	5	3	
7105101000	Natural	5	0	
7105102000	Synthetic	5	0	
7105901000	Of garnet	5	0	
7105909000	Other	5	0	
7106100000	Powder	3	0	
7106911000	Containing by weight 99.99 % or more of silver	3	0	
7106919000	Other	3	0	
7106921000	Bars, rods and shapes	3	0	
7106922000	Plates, sheets and strips	3	0	
7106923000	Wire	3	0	
7106929000	Other	3	0	
7107001000	Bars, rods and shapes	3	0	
7107002000	Plates, sheets and strips	3	0	
7107003000	Wire	3	0	
7107004000	Tubes, pipes and hollow bars	3	0	
7107009000	Other	3	0	
7108110000	Powder	3	0	
7108121000	Lumps, billets and grains	3	0	
7108129000	Other	3	0	
7108131010	For use in manufacturing semiconductor	3	0	
7108131090	Other	3	0	
7108139010	Bars, rods and shapes	3	0	
7108139020	Plates, sheets and strips	3	0	
7108139090	Other	3	0	
7108200000	Monetary	0	0	
7109000000	Base metals or silver, clad with gold, not further worked than semi-manufactured	3	0	
7110110000	Unwrought or in powder form	3	0	
7110190000	Other	3	0	
7110210000	Unwrought or in powder form	3	0	
7110290000	Other	3	0	
7110310000	Unwrought or in powder form	3	0	
7110390000	Other	3	0	
7110410000	Unwrought or in powder form	3	0	
7110490000	Other	3	0	
7111000000	Base metals, silver or gold, clad with platinum, not further worked than semi-manufactured.	3	0	
7112300000	Ash containing precious metal or precious metal compounds	2	0	
7112911000	Of residues	2	0	
7112919000	Other	3	0	
7112921000	Of residues	2	0	
7112929000	Other	3	0	
7112991000	Of residues	2	0	
7112992000	Of waste, paring and scrap of plastics	6.5	0	
7112999000	Other	3	0	
7113110000	Of silver, whether or not plated or clad with other precious metal	8	0	
7113191000	Of platinum	8	0	
7113192000	Of gold	8	0	
7113199000	Other	8	0	
7113201000	Platinum-clad	8	0	
7113202000	Gold-clad	8	0	
7113203000	Silver-clad	8	0	
7113209000	Other	8	0	
7114111000	For table	8	0	
7114112000	For toilet	8	0	
7114113000	For office and desk	8	0	
7114114000	For use by smokers	8	0	
7114119000	Other	8	0	
7114191000	For table	8	0	
7114192000	For toilet	8	0	
7114193000	For office and desk	8	0	
7114194000	For use by smokers	8	0	
7114199000	Other	8	0	
7114201000	For table	8	0	
7114202000	For toilet	8	0	
7114203000	For office and desk	8	0	
7114204000	For use by smokers	8	0	
7114209000	Other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7115100000	Catalysts in the form of wire cloth or grill, of platinum	8	0	
7115901010	Platinum crucible	8	0	
7115901090	Other	8	0	
7115909010	Of gold, including metals clad with gold	8	0	
7115909020	Of silver, including metals clad with silver	8	0	
7115909090	Other	8	0	
7116101000	Of natural pearls	8	0	
7116102000	Of cultured pearls	8	0	
7116201000	Industrial	8	0	
7116209010	For personal adornment	8	0	
7116209090	Other	8	0	
7117110000	Cuff-links and studs	8	0	
7117191000	Necklace	8	0	
7117192000	Bracelet	8	0	
7117193000	Earring	8	0	
7117194000	Brooch	8	0	
7117195000	Ring	8	0	
7117196000	Chains for personal adornment	8	0	
7117199000	Other	8	0	
7117900000	Other	8	0	
7118100000	Coin (other than gold coin), not being legal tender	0	0	
7118901000	Gold coin	0	0	
7118902000	Silver coin	0	0	
7118909000	Other	0	0	
7201101000	For casting	0	0	
7201102000	For steel manufacture	0	0	
7201109000	Other	0	0	
7201200000	Non-alloy pig iron containing by weight more than 0.5 % of phosphorus	0	0	
7201501000	Alloy pig iron	2	0	
7201502000	Spiegeleisen	2	0	
7202110000	Containing by weight more than 2 % of carbon	5	5	
7202190000	Other	5	5	
7202210000	Containing by weight more than 55 % of silicon	3	0	
7202291000	Containing by weight 2 % or more of magnesium	3	0	
7202299000	Other	3	0	
7202300000	Ferro-silico-manganese	5	5	
7202410000	Containing by weight more than 4 % of carbon	3	0	
7202490000	Other	3	0	
7202500000	Ferro-silico-chromium	3	0	
7202600000	Ferro-nickel	3	0	
7202700000	Ferro-molybdenum	3	0	
7202800000	Ferro-tungsten and ferro-silico-tungsten	3	0	
7202910000	Ferro-titanium and ferro-silico-titanium	3	0	
7202920000	Ferro-vanadium	3	0	
7202930000	Ferro-niobium	3	0	
7202991000	Ferro-phosphorus (iron phosphide),containing by weight 15 % or more of phosphorus	3	0	
7202999000	Other	3	0	
7203100000	Ferrous products obtained by direct reduction of iron ore	0	0	
7203900000	Other	1	0	
7204100000	Waste and scrap of cast iron	0	0	
7204210000	Of stainless steel	0	0	
7204290000	Other	0	0	
7204300000	Waste and scrap of tinned iron or steel	0	0	
7204410000	Turnings, shavings, chips, milling waste, sawdust, filings, trimmings and stampings whether or not in bundles	0	0	
7204490000	Other	0	0	
7204500000	Remelting scrap ingots	0	0	
7205101000	Shot	5	0	
7205102000	Grit	5	0	
7205109000	Other	5	0	
7205210000	Of alloy steel	5	0	
7205290000	Other	5	0	
7206100000	Ingots	0	0	
7206900000	Other	0	0	
7207111000	Blooms	0	0	
7207112000	Billets	0	0	
7207121000	Slabs	0	0	
7207122000	Sheet bars	0	0	
7207190000	Other	0	0	
7207201000	Blooms	0	0	
7207202000	Billets	0	0	
7207203000	Slabs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7207204000	Sheet bars	0	0	
7207209000	Other	0	0	
7208101000	Of a thickness of 4.75 ㎜ or more	0	0	
7208109000	Of a thickness of less than 4.75 ㎜	0	0	
7208251000	Of a tensile strength of 490MPa or more	0	0	
7208259000	Other	0	0	
7208261000	Of a tensile strength of 490MPa or more	0	0	
7208269000	Other	0	0	
7208271000	Of a tensile strength of 490MPa or more	0	0	
7208279000	Other	0	0	
7208361000	Of a tensile strength of 490MPa or more	0	0	
7208369000	Other	0	0	
7208371000	Of a tensile strength of 490MPa or more	0	0	
7208379000	Other	0	0	
7208381000	Of a tensile strength of 490MPa or more	0	0	
7208389000	Other	0	0	
7208391000	Of a tensile strength of 490MPa or more	0	0	
7208399000	Other	0	0	
7208400000	Not in coils,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with patterns in relief	0	0	
7208511000	Of a tensile strength of 490MPa or more	0	0	
7208519000	Other	0	0	
7208521000	Of a tensile strength of 490MPa or more	0	0	
7208529000	Other	0	0	
7208531000	Of a tensile strength of 490MPa or more	0	0	
7208539000	Other	0	0	
7208541000	Of a tensile strength of 490MPa or more	0	0	
7208549000	Other	0	0	
7208900000	Other	0	0	
7209151000	Of a tensile strength of 340MPa or more	0	0	
7209159000	Other	0	0	
7209161000	Of a tensile strength of 340MPa or more	0	0	
7209169000	Other	0	0	
7209171000	Of a tensile strength of 340MPa or more	0	0	
7209179000	Other	0	0	
7209181000	Of a tensile strength of 340MPa or more	0	0	
7209189000	Other	0	0	
7209251000	Of a tensile strength of 340MPa or more	0	0	
7209259000	Other	0	0	
7209261000	Of a tensile strength of 340MPa or more	0	0	
7209269000	Other	0	0	
7209271000	Of a tensile strength of 340MPa or more	0	0	
7209279000	Other	0	0	
7209281000	Of a tensile strength of 340MPa or more	0	0	
7209289000	Other	0	0	
7209900000	Other	0	0	
7210110000	Of a thickness of 0.5 ㎜ or more	0	0	
7210120000	Of a thickness of less than 0.5 ㎜	0	0	
7210200000	Plated or coated with lead, including terneplate	0	0	
7210301000	Of a tensile strength of 340MPa or more	0	0	
7210309000	Other	0	0	
7210410000	Corrugated	0	0	
7210491010	Of a tensile strength of 340MPa or more	0	0	
7210491090	Other	0	0	
7210499010	Of a tensile strength of 340MPa or more	0	0	
7210499090	Other	0	0	
7210500000	Plated or coated with chromium oxides or with chromium and chromium oxides	0	0	
7210610000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zinc alloys	0	0	
7210690000	Other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7210700000	Painted, varnished or coated with plastics	0	0	
7210901000	Plated or coated with nickel	0	0	
7210902000	Plated or coated with copper	0	0	
7210909000	Other	0	0	
7211130000	Rolled on four faces or in a closed box pass, of a width exceeding 150 mm and a thickness of not less than 4 mm, not in coils and without patterns in relief	0	0	
7211141000	Of a tensile strength of 490MPa or more	0	0	
7211149000	Other	0	0	
7211191000	Of a tensile strength of 490MPa or more	0	0	
7211199000	Other	0	0	
7211231000	Of a tensile strength of 340MPa or more	0	0	
7211239000	Other	0	0	
7211291000	Of a tensile strength of 340MPa or more	0	0	
7211299000	Other	0	0	
7211901000	Of a tensile strength of 340MPa or more	0	0	
7211909000	Other	0	0	
7212101000	Of a thickness of 0.5 mm or more	0	0	
7212102000	Of a thickness of less than 0.5 mm	0	0	
7212201000	Of a tensile strength of 340MPa or more	0	0	
7212209000	Other	0	0	
7212301010	Of a tensile strength of 340MPa or more	0	0	
7212301090	Other	0	0	
7212309010	Of a tensile strength of 340MPa or more	0	0	
7212309090	Other	0	0	
7212400000	Painted, varnished or coated with plastics	0	0	
7212501000	Plated or coated with nickel	0	0	
7212502000	Plated or coated with copper	0	0	
7212509000	Other	0	0	
7212600000	Clad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7213100000	Containing indentations, ribs, grooves or other deformations produced during the rolling process	0	0	
7213200000	Other, of free-cutting steel	0	0	
7213911010	Containing by weight 0.25 % or more of carbon	0	0	
7213911090	Other	0	0	
7213919000	Other	0	0	
7213991010	Containing by weight 0.25 % or more of carbon	0	0	
7213991090	Other	0	0	
7213999000	Other	0	0	
7214100000	Forged	0	0	
7214201000	Concrete reinforcing bar	0	0	
7214209000	Other	0	0	
7214300000	Other, of free-cutting steel	0	0	
7214910000	Of rectangular (other than square)cross-section	0	0	
7214991000	Containing by weight less than 0.6 % of carbon	0	0	
7214999000	Other	0	0	
7215100000	Of free-cutting steel, not further worked than cold-formed or cold-finished	0	0	
7215500000	Other, not further worked than cold-formed or cold-finished	0	0	
7215900000	Other	0	0	
7216101000	U sections	0	0	
7216102000	I sections	0	0	
7216103000	H sections	0	0	
7216210000	L sections	0	0	
7216220000	T sections	0	0	
7216310000	U sections	0	0	
7216320000	I sections	0	0	
7216333000	Less than 300 mm in height	0	0	
7216334000	300 mm or more but not more than 600 mm in height	0	0	
7216335000	More than 600 mm in height	0	0	
7216401000	L sections	0	0	
7216402000	T sections	0	0	
7216500000	Other angles, shapes and sections,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hot-drawn or extruded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7216610000	Obtained from flat-rolled products	0	0	
7216690000	Other	0	0	
7216910000	Cold-formed or cold-finished from flat-rolled products	0	0	
7216990000	Other	0	0	
7217100000	Not plated or coated, whether or not polished	0	0	
7217200000	Plated or coated with zinc	0	0	
7217301000	Plated or coated with copper	0	0	
7217309000	Other	0	0	
7217900000	Other	0	0	
7218101000	Ingots	0	0	
7218109000	Other	0	0	
7218911000	Slabs	0	0	
7218912000	Sheet bars	0	0	
7218919000	Other	0	0	
7218991000	Blooms	0	0	
7218992000	Billets	0	0	
7218999000	Other	0	0	
7219111010	Containing nickel less than 6% and containing manganese at least 3% by weight	0	0	
7219111090	Other	0	0	
7219119000	Other	0	0	
7219121010	Containing nickel less than 6% and containing manganese at least 3% by weight	0	0	
7219121090	Other	0	0	
7219129000	Other	0	0	
7219131010	Containing nickel less than 6% and containing manganese at least 3% by weight	0	0	
7219131090	Other	0	0	
7219139000	Other	0	0	
7219141010	Containing nickel less than 6% and containing manganese at least 3% by weight	0	0	
7219141090	Other	0	0	
7219149000	Other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7219211010	Containing nickel less than 6% and containing manganese at least 3% by weight	0	0	
7219211090	Other	0	0	
7219219000	Other	0	0	
7219221010	Containing nickel less than 6% and containing manganese at least 3% by weight	0	0	
7219221090	Other	0	0	
7219229000	Other	0	0	
7219231010	Containing nickel less than 6% and containing manganese at least 3% by weight	0	0	
7219231090	Other	0	0	
7219239000	Other	0	0	
7219241010	Containing nickel less than 6% and containing manganese at least 3% by weight	0	0	
7219241090	Other	0	0	
7219249000	Other	0	0	
7219311010	Containing nickel less than 6% and containing manganese at least 3% by weight	0	0	
7219311090	Other	0	0	
7219319000	Other	0	0	
7219321010	Containing nickel less than 6% and containing manganese at least 3% by weight	0	0	
7219321090	Other	0	0	
7219329000	Other	0	0	
7219331010	Containing nickel less than 6% and containing manganese at least 3% by weight	0	0	
7219331090	Other	0	0	
7219339000	Other	0	0	
7219341010	Containing nickel less than 6% and containing manganese at least 3% by weight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7219341090	Other	0	0	
7219349000	Other	0	0	
7219351010	Containing nickel less than 6% and containing manganese at least 3% by weight	0	0	
7219351090	Other	0	0	
7219359000	Other	0	0	
7219901010	Containing nickel less than 6% and containing manganese at least 3% by weight	0	0	
7219901090	Other	0	0	
7219909000	Other	0	0	
7220111010	Containing nickel less than 6% and containing manganese at least 3% by weight	0	0	
7220111090	Other	0	0	
7220119000	Other	0	0	
7220121010	Containing nickel less than 6% and containing manganese at least 3% by weight	0	0	
7220121090	Other	0	0	
7220129000	Other	0	0	
7220201010	Containing nickel less than 6% and containing manganese at least 3% by weight	0	0	
7220201090	Other	0	0	
7220209000	Other	0	0	
7220901010	Containing nickel less than 6% and containing manganese at least 3% by weight	0	0	
7220901090	Other	0	0	
7220909000	Other	0	0	
7221000000	Bars and rods, hot-rolled, in irregularly wound coils, of stainless steel	0	0	
7222110000	Of circular cross-section	0	0	
7222190000	Other	0	0	
7222200000	Bars and rods, not further worked than cold-formed or cold-finished	0	0	
7222300000	Other bars and rods	0	0	
7222400000	Angles, shapes and sections	0	0	
7223000000	Wire of stainless steel	0	0	
7224101000	Ingots	0	0	
7224109000	Other	0	0	
7224901000	Blooms	0	0	
7224902000	Billets	0	0	
7224903000	Slabs	0	0	
7224904000	Sheet bars	0	0	
7224909000	Other	0	0	
7225110000	Grain-oriented	0	0	
7225190000	Other	0	0	
7225301000	Of high speed steel	0	0	
7225309010	Of a tensile strength of 490MPa or more	0	0	
7225309090	Other	0	0	
7225401000	Of high speed steel	0	0	
7225409010	Of a tensile strength of 490MPa or more	0	0	
7225409090	Other	0	0	
7225501000	Of high speed steel	0	0	
7225509000	Other	0	0	
7225911000	Of high speed steel	0	0	
7225919010	Of a tensile strength of 340MPa or more	0	0	
7225919090	Other	0	0	
7225921000	Of high speed steel	0	0	
7225929011	Of a tensile strength of 340MPa or more	0	0	
7225929019	Other	0	0	
7225929091	Of a tensile strength of 340MPa or more	0	0	
7225929099	Other	0	0	
7225991000	Of high speed steel	0	0	
7225999000	Other	0	0	
7226110000	Grain-oriented	0	0	
7226190000	Other	0	0	
7226200000	Of high speed steel	0	0	
7226910000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0	0	
7226920000	Not further worked than cold-rolled (cold- reduced)	0	0	
7226991000	Amorphous alloy steel thin sheet of a thickness of less than 100 ㎛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7226992000	Electrolytically plated or coated with zinc	0	0	
7226993000	Otherwise plated or coated with zinc	0	0	
7226999000	Other	0	0	
7227100000	Of high speed steel	0	0	
7227200000	Of silico-manganese steel	0	0	
7227901000	Of heat-resisting steel	0	0	
7227909000	Other	0	0	
7228100000	Bars and rods, of high speed steel	0	0	
7228200000	Bars and rods, of silico-manganese steel	0	0	
7228300000	Other bars and rods,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hot-drawn or extruded	0	0	
7228400000	Other bars and rods, not further worked than forged	0	0	
7228500000	Other bars and rods, not further worked than cold-formed or cold-finished	0	0	
7228600000	Other bars and rods	0	0	
7228700000	Angles, shapes and sections	0	0	
7228800000	Hollow drill bars and rods	0	0	
7229200000	Of silico-manganese steel	0	0	
7229901010	Of high speed steel	0	0	
7229901090	Other	0	0	
7229902010	Of high speed steel	0	0	
7229902090	Other	0	0	
7229909010	Of high speed steel	0	0	
7229909090	Other	0	0	
7301101000	U type	0	0	
7301109000	Other	0	0	
7301201000	U sections	0	0	
7301202000	H sections	0	0	
7301203000	I sections	0	0	
7301209000	Other	0	0	
7302101010	Heat treated	0	0	
7302101090	Other	0	0	
7302102010	Heat treated	0	0	
7302102090	Other	0	0	
7302103010	Heat treated	0	0	
7302103090	Other	0	0	
7302104010	Heat treated	0	0	
7302104090	Other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7302300000	Switch blades, crossing frogs, point rods and other crossing pieces	8	0	
7302400000	Fish-plates and sole plates	0	0	
7302900000	Other	0	0	
7303001010	Of ductile cast iron	8	0	
7303001090	Other	8	5	
7303002000	Hollow profiles	8	0	
7304110000	Of stainless steel	0	0	
7304190000	Other	0	0	
7304220000	Drill pipe of stainless steel	0	0	
7304230000	Other drill pipe	0	0	
7304240000	Other, of stainless steel	0	0	
7304290000	Other	0	0	
7304310000	Cold-drawn or cold-rolled (cold-reduced)	0	0	
7304390000	Other	0	0	
7304410000	Cold-drawn or cold-rolled (cold-reduced)	0	0	
7304490000	Other	0	0	
7304510000	Cold-drawn or cold-rolled(cold-reduced)	0	0	
7304590000	Other	0	0	
7304900000	Other	0	0	
7305111000	More than 406.4 mm but not more than 1,422.4 mm in external diameter	0	0	
7305112000	More than 1,422.4 mm in external diameter	0	0	
7305120000	Other, longitudinally welded	0	0	
7305190000	Other	0	0	
7305200000	Casing of a kind used in drilling for oil or gas	0	0	
7305311000	Submerged arc welded	0	0	
7305312000	Electric resistance welded	0	0	
7305319000	Other	0	0	
7305390000	Other	0	0	
7305900000	Other	0	0	
7306110000	Welded, of stainless steel	0	0	
7306190000	Other	0	0	
7306211000	Casing	0	0	
7306212000	Tubing	0	0	
7306291000	Casing	0	0	
7306292000	Tubing	0	0	
7306301010	Zinc galvanized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7306301020	Plated or clad with metal other than zinc	0	0	
7306301030	Coated with non-metal	0	0	
7306301090	Other	0	0	
7306302010	Zinc galvanized	0	0	
7306302020	Plated or clad with metal other than zinc	0	0	
7306302030	Coated with non-metal	0	0	
7306302090	Other	0	0	
7306401000	More than 114.3 ㎜ in external diameter	0	0	
7306402000	Not more than 114.3 ㎜ in external diameter	0	0	
7306500000	Other, welded, of circular cross-section, of other alloy steel	0	0	
7306611010	Galvanized zinc	0	0	
7306611090	Other	0	0	
7306612000	Of stainless steel	0	0	
7306613000	Of other alloy steel	0	0	
7306691010	Galvanized zinc	0	0	
7306691090	Other	0	0	
7306692000	Of stainless steel	0	0	
7306693000	Of other alloy steel	0	0	
7306901000	Double wall steel tube	0	0	
7306909000	Other	0	0	
7307110000	Of non-malleable cast iron	8	0	
7307190000	Other	8	3	
7307210000	Flanges	8	3	
7307221000	Threaded sleeves, of stainless steel	0	0	
7307229000	Other	8	0	
7307230000	Butt welding fittings	8	0	
7307290000	Other	8	0	
7307910000	Flanges	8	0	
7307921000	Threaded sleeves, of iron or steel	0	0	
7307929000	Other	8	0	
7307930000	Butt welding fittings	8	0	
7307991000	Threaded, whether or not plated	8	0	
7307999000	Other	8	0	
7308100000	Bridges and bridge-sections	0	0	
7308200000	Towers and lattice masts	8	0	
7308300000	Doors, windows and their frames and thresholds for doors	8	0	
7308400000	Equipment for scaffolding, shuttering, propping or pitpropping	8	0	
7308901000	Lock-gates	0	0	
7308909000	Other	0	0	
7309000000	Reservoirs, tanks, vats and similar containers for any material (other than compressed or liquefied gas), of iron or steel, of a capacity exceeding 300 ℓ, whether or not lined or heat-insulated, but not fitted with mechanical or thermal equipment	8	3	
7310100000	Of a capacity of 50 ℓ or more	8	3	
7310210000	Cans which are to be closed by soldering or crimping	8	0	
7310290000	Other	8	0	
7311001000	Not more than 30 ℓ in capacity	8	0	
7311002000	More than 30 ℓ but not more than 100 ℓ in capacity	8	0	
7311003000	More than 100 ℓ in capacity	8	0	
7312101011	Fitted with fittings or made up into articles	0	0	
7312101019	Other	0	0	
7312101091	Fitted with fittings or made up into articles	0	0	
7312101092	Steel tire cords	0	0	
7312101099	Other	0	0	
7312102011	Fitted with fitting or made up into articles	0	0	
7312102019	Other	0	0	
7312102091	Fitted with fittings or made up into articles	0	0	
7312102092	Steel tire cords	0	0	
7312102099	Other	0	0	
7312900000	Other	0	0	
7313001000	Barbed iron or steel wire	0	0	
7313009000	Other	0	0	
7314120000	Endless bands for machinery, of stainless steel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7314140000	Other woven cloth, of stainless steel	0	0	
7314190000	Other	0	0	
7314200000	Grill, netting and fencing, welded at the intersection, of wire with a maximum cross-sectional dimension of 3 ㎜ or more and having a mesh size of 100 ㎠ or more	0	0	
7314310000	Plated or coated with zinc	0	0	
7314390000	Other	0	0	
7314410000	Plated or coated with zinc	0	0	
7314420000	Coated with plastics	0	0	
7314490000	Other	0	0	
7314500000	Expanded metal	0	0	
7315110000	Roller chain	8	3	
7315120000	Other chain	8	3	
7315190000	Parts	8	0	
7315200000	Skid chain	8	0	
7315810000	Stud-link	8	0	
7315820000	Other, welded link	8	0	
7315890000	Other	8	3	
7315900000	Other parts	8	0	
7316001000	Anchors and grapnels	8	0	
7316002000	Parts	8	0	
7317001011	Plated, coated or painted	0	0	
7317001019	Other	0	0	
7317001021	Plated, coated or painted	0	0	
7317001029	Other	0	0	
7317002000	Tacks	0	0	
7317003000	Drawing or office working pins	0	0	
7317004000	Corrugated nails	0	0	
7317005000	Staples	0	0	
7317009000	Other	0	0	
7318110000	Coach screws	8	0	
7318120000	Other wood screws	8	0	
7318130000	Screw hooks and screw rings	8	0	
7318140000	Self-tapping screws	8	0	
7318151000	Machine screws	8	0	
7318152000	Bolts	8	0	
7318153000	Bolts and nuts (in set)	8	0	
7318159000	Other	8	0	
7318160000	Nuts	8	0	
7318190000	Other	8	5	
7318210000	Spring washers and other lock washers	8	0	
7318220000	Other washers	8	5	
7318230000	Rivets	8	3	
7318240000	Cotters and cotter-pins	8	0	
7318290000	Other	8	3	
7319200000	Safety pins	8	0	
7319301000	Pin used for measuring or checking semiconductor wafers or device	8	0	
7319309000	Other	8	0	
7319901010	Sewing needles	8	0	
7319901020	Darning needles	8	3	
7319901090	Other	8	3	
7319909000	Other	8	5	
7320101000	Leaf-springs for automobiles	8	0	
7320102000	Leaf-springs for railway locomotives and rolling stocks	8	0	
7320109000	Other	8	0	
7320201000	For automobiles	8	0	
7320202000	For shockabsorbers	8	0	
7320203000	For buffers on rolling stock couplings	8	0	
7320204000	For upholstery	8	0	
7320209000	Other	8	0	
7320901000	Flat spiral springs	8	0	
7320909000	Other springs	8	0	
7321110000	For gas fuel or for both gas and other fuels	8	0	
7321120000	For liquid fuel	8	0	
7321190000	Other, including appliances for solid fuel	8	0	
7321810000	For gas fuel or for both gas and other fuels	8	0	
7321820000	For liquid fuel	8	0	
7321890000	Other, including appliances for solid fuel	8	0	
7321900000	Parts	8	0	
7322111000	Radiators	8	0	
7322112000	Parts	8	0	
7322191000	Radiators	8	0	
7322192000	Parts	8	3	
7322901000	Solar collector and parts thereof	8	0	
7322909010	Air heater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7322909020	Hot air distributor	8	0	
7322909030	Parts	8	3	
7323100000	Iron or steel wool; pot scourers and scouring or polishing pads, gloves and the like	8	0	
7323910000	Of cast iron, not enamelled	8	0	
7323920000	Of cast iron, enamelled	8	0	
7323930000	Of stainless steel	8	0	
7323940000	Of iron (other than cast iron) or steel, enamelled	8	0	
7323990000	Other	8	0	
7324101000	Sinks	8	0	
7324102000	Wash basins	8	0	
7324210000	Of cast iron, whether or not enamelled	8	0	
7324291000	Of stainless steel	8	0	
7324299000	Other	8	0	
7324901000	Toilet sets	8	0	
7324908000	Other	8	0	
7324909000	Parts	8	3	
7325100000	Of non-malleable cast iron	8	0	
7325910000	Grinding balls and similar articles for mills	8	0	
7325991000	Of cast iron	8	0	
7325992000	Of cast steel	8	0	
7325993000	Of alloy steel	8	0	
7325999000	Other	8	0	
7326110000	Grinding balls and similar articles for mills	8	0	
7326190000	Other	8	0	
7326200000	Articles of iron or steel wire	8	3	
7326901000	Bobbins for textile machinery	8	0	
7326909000	Other	8	0	
7401001000	Copper mattes	0	0	
7401002000	Cement copper (precipitated copper)	0	0	
7402001000	Unrefined copper	0	0	
7402002000	Copper anodes for electrolytic refining	0	0	
7403110000	Cathodes and sections of cathodes	3	3	
7403120000	Wire-bars	5	0	
7403130000	Billets	5	0	
7403191000	Slabs	5	0	
7403192000	Ingots	5	0	
7403199000	Other	5	0	
7403210000	Copper-zinc base alloys (brass)	5	0	
7403220000	Copper-tin base alloys (bronze)	5	0	
7403291010	Copper-nickel base alloys (cupro-nickel)	5	0	
7403291020	Copper-nickel-zinc base alloys (nickel silver)	5	0	
7403299000	Other	5	0	
7404000000	Copper waste and scrap	0	0	
7405000000	Master alloys of copper	5	0	
7406100000	Powders of non-lamellar structure	8	0	
7406201000	Powders of lamellar structure	8	0	
7406202000	Flakes	8	0	
7407100000	Of refined copper	8	0	
7407210000	Of copper-zinc base alloys (brass)	8	0	
7407291000	Of copper-tin base alloys (bronze)	8	0	
7407292010	Of copper-nickel base alloys (cupro-nickel)	8	0	
7407292020	Of copper-nickel-zinc base alloys (nickel silver)	8	0	
7407299000	Other	8	0	
7408110000	Of which the maximum cross-sectional dimension exceeds 6 ㎜	8	0	
7408190000	Other	8	0	
7408210000	Of copper-zinc base alloys (brass)	8	0	
7408221000	Of copper-nickel base alloys (cupro-nickel)	8	0	
7408222000	Of copper-nickel-zinc base alloys (nickel silver)	8	0	
7408291000	Of copper-tin base alloys (bronze)	8	0	
7408299000	Other	8	0	
7409111000	For use in manufacturing semiconductor	5	0	
7409119000	Other	8	0	
7409191000	For use in manufacturing semiconductor	5	0	
7409199000	Other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7409211000	For use in manufacturing semiconductor	5	0	
7409219000	Other	8	0	
7409291000	For use in manufacturing semiconductor	5	0	
7409299000	Other	8	0	
7409311000	For use in manufacturing semiconductor	5	0	
7409319000	Other	8	0	
7409391000	For use in manufacturing semiconductor	5	0	
7409399000	Other	8	0	
7409401010	For use in manufacturing semiconductor	5	0	
7409401090	Other	8	0	
7409402010	For use in manufacturing semiconductor	5	0	
7409402090	Other	8	0	
7409901000	For use in manufacturing semiconductor	5	0	
7409909000	Other	8	0	
7410110000	Of refined copper	8	0	
7410120000	Of copper alloys	8	0	
7410211000	Suitable for manufacturing printed circuit board	8	0	
7410219000	Other	8	0	
7410221000	Suitable for manufacturing printed circuit board	8	0	
7410229000	Other	8	0	
7411100000	Of refined copper	8	0	
7411210000	Of copper-zinc base alloys (brass)	8	0	
7411221000	Of copper-nickel base alloys (cupro-nickel)	8	0	
7411222000	Of copper-nickel-zinc base alloys (nickel silver)	8	0	
7411291000	Of copper-tin base alloys (bronze)	8	0	
7411299000	Other	8	3	
7412100000	Of refined copper	3	0	
7412200000	Of copper alloys	3	0	
7413000000	Stranded wire, cable, plaited bands and the like, of copper, not electrically insulated	3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7415101000	Plated, rolled or coated with precious metal	8	0	
7415109000	Other	8	0	
7415210000	Washers (including spring washers)	8	0	
7415290000	Other	8	0	
7415330000	Screws; bolts and nuts	8	0	
7415390000	Other	8	0	
7418110000	Pot scourers and scouring or polishing pads, gloves and the like	8	0	
7418191000	Table, kitchen articles	8	0	
7418192010	Solar collectors of a kind used for domestic purposes, non-electric	5	0	
7418192090	Other	8	0	
7418199010	Of solar collectors of a kind used for domestic purposes, non-electric	5	0	
7418199090	Other	8	0	
7418201000	Sanitary ware	8	0	
7418202000	Parts	8	0	
7419101000	Chain	8	0	
7419102000	Parts	8	0	
7419910000	Cast, moulded, stamped or forged, but not further worked	0	0	
7419991010	Cloth	8	0	
7419991090	Other	8	0	
7419992000	Copper springs	8	0	
7419999000	Other	8	0	
7501100000	Nickel mattes	0	0	
7501201010	Containing by weight 88 % or more of nickel	2	10	
7501201090	Other	0	0	
7501209010	Containing by weight 88 % or more of nickel	2	10	
7501209090	Other	0	0	
7502101000	Cathode	3	10	
7502109000	Other	3	10	
7502200000	Nickel alloys	3	0	
7503000000	Nickel waste and scrap	0	0	
7504001000	Powders	5	3	
7504002000	Flakes	5	3	
7505110000	Of nickel, not alloyed	5	0	
7505120000	Of nickel alloys	5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7505210000	Of nickel, not alloyed	5	0	
7505220000	Of nickel alloys	5	0	
7506101000	Plates, sheets and strip	5	0	
7506102000	Foil	5	0	
7506201000	Plates, sheets and strip	5	0	
7506202000	Foil	5	0	
7507110000	Of nickel, not alloyed	8	0	
7507120000	Of nickel alloys	8	0	
7507200000	Tube or pipe fittings	8	0	
7508100000	Cloth, grill and netting, of nickel wire	8	0	
7508901000	Electro-plating anodes	8	0	
7508902010	Of nickel, not alloyed	8	0	
7508902020	Of nickel alloys	8	0	
7508909000	Other	8	0	
7601100000	Aluminium, not alloyed	1	0	
7601201000	Casting alloy	1	0	
7601202000	Billet	3	0	
7601209000	Other	1	0	
7602000000	Aluminium waste and scrap	0	0	
7603100000	Powders of non-lamellar structure	8	3	
7603201000	Powders	8	3	
7603202000	Flakes	8	3	
7604101000	Bars and rods	8	0	
7604102010	Hollow profiles	8	0	
7604102090	Other	8	0	
7604210000	Hollow profiles	8	0	
7604291000	Bars and rods	8	0	
7604299000	Other profiles	8	0	
7605110000	Of which the maximum cross-sectional dimension exceeds 7 ㎜	8	0	
7605190000	Other	8	0	
7605210000	Of which the maximum cross-sectional dimension exceeds 7 ㎜	8	0	
7605290000	Other	8	0	
7606111000	Containing not less than 99.99 % by weight of aluminium	8	5	
7606119000	Other	8	5	
7606120000	Of aluminium alloys	8	5	
7606911000	Containing not less than 99.99 % by weight of aluminium	8	5	
7606919000	Other	8	5	
7606920000	Of aluminium alloys	8	5	
7607111000	Containing not less than 99.99 % by weight of aluminium	8	0	
7607119000	Other	8	0	
7607191000	Containing not less than 99.99 % by weight of aluminium	8	0	
7607199000	Other	8	0	
7607201000	Containing not less than 99.99 % by weight of aluminium	8	0	
7607209000	Other	8	0	
7608100000	Of aluminium, not alloyed	8	3	
7608200000	Of aluminium alloys	8	3	
7609000000	Aluminium tube or pipe fittings (for example, couplings, elbows, sleeves)	8	3	
7610100000	Doors, windows and their frames and thresholds for doors	8	3	
7610901000	Structures	8	3	
7610908000	Other	8	3	
7610909000	Parts	8	3	
7611000000	Aluminium reservoirs, tanks, vats and similar containers, for any material (other than compressed or liquefied gas), of a capacity exceeding 300 ℓ, whether or not lined or heat-insulated, but not fitted with mechanical or thermal equipment	8	7	
7612100000	Collapsible tubular containers	8	5	
7612901000	Rigid tubular containers	8	5	
7612909010	Less than 1 ℓ capacity	8	5	
7612909020	Not less than 1 ℓ but less than 20 ℓ in capacity	8	5	
7612909030	Not less than 20 ℓ in capacity	8	5	
7613001000	For compressed gas	8	0	
7613002000	For liquefied gas	8	0	
7614100000	With steel core	8	0	
7614900000	Other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7615110000	Pot scourers and scouring or polishing pads, gloves and the like	8	0	
7615191000	Solar collectors and parts thereof	5	0	
7615192000	Table, kitchen articles	8	0	
7615193000	Other household articles	8	0	
7615199000	Parts	8	0	
7615201000	Sanitary ware	8	0	
7615202000	Parts	8	0	
7616100000	Nails, tacks, staple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83.05), screws, bolts, nuts, screw hooks, rivets, cotters, cotter-pins, washers and similar articles	8	0	
7616910000	Cloth, grill, netting and fencing, of aluminium wire	8	0	
7616991000	Bobbins	8	0	
7616999010	Aluminium pouch	8	0	
7616999020	Aluminium knob	8	0	
7616999090	Other	8	0	
7801101000	Containing by weight 99.99 % or more of lead	3	10	
7801109000	Other	3	10	
7801910000	Containing by weight antimony as the principal other element	3	10	
7801991000	Unrefined lead	1	10	
7801992010	Lead-tin alloys	3	10	
7801992090	Other	3	10	
7802000000	Lead waste and scrap	0	0	
7804111000	Sheets and strip	8	0	
7804112000	Foil	8	0	
7804190000	Other	8	0	
7804201000	Powders	8	0	
7804202000	Flakes	8	0	
7806001000	Lead containers	8	0	
7806002000	Electro-plating anodes	8	0	
7806003010	Bars and rods	8	0	
7806003020	Profiles	8	0	
7806003030	Wire	8	0	
7806004010	Tubes and pipes	8	0	
7806004020	Tubes or pipe fittings	8	0	
7806009000	Other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7901110000	Containing by weight 99.99 % or more of zinc	3	10	
7901120000	Containing by weight less than 99.99 % of zinc	3	10	
7901201000	Zinc-aluminium alloy	3	10	
7901202000	Zinc-copper alloy	3	10	
7901209000	Other	3	10	
7902000000	Zinc waste and scrap	0	0	
7903100000	Zinc dust	8	0	
7903901000	Powders	8	0	
7903902000	Flakes	8	0	
7904001000	Bars and rods	8	0	
7904002000	Profiles	8	0	
7904003000	Wire	8	0	
7905001000	Plates, sheets and strip	8	0	
7905002000	Foil	8	0	
7907001000	Gutters, roof capping, skylight frames and other fabricated building components	8	0	
7907002010	Tubes and pipes	8	0	
7907002020	Tube or pipe fittings	8	0	
7907009010	Electro-plating anodes	8	0	
7907009090	Other	8	0	
8001100000	Tin, not alloyed	3	0	
8001200000	Tin alloys	3	0	
8002000000	Tin waste and scrap	0	0	
8003001010	Unalloyed	8	0	
8003001090	Other	8	0	
8003002010	Unalloyed	8	0	
8003002090	Other	8	0	
8007001000	Electro-plating anodes	8	0	
8007002000	Plates, sheets and strip, of a thickness exceeding 0.2 mm	8	0	
8007003010	Foil	8	0	
8007003021	Powders	8	0	
8007003022	Flakes	8	0	
8007004000	Tubes, pipes and tube or pipe fittings (for example, couplings, elbows, sleeves)	8	0	
8007009000	Other	8	0	
8101100000	Powders	3	0	
8101940000	Unwrought tungsten, including bars and rods obtained simply by sintering	3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101961000	Spiral filament for electric bulbs or electronic bulbs	8	0	
8101969000	Other	8	0	
8101970000	Waste and scrap	0	0	
8101991010	Bars and rods	8	0	
8101991020	Profiles	8	0	
8101991030	Plates, sheets and strips	8	0	
8101991040	Foil	8	0	
8101999000	Other	8	0	
8102100000	Powders	3	0	
8102940000	Unwrought molybdenum, including bars and rods obtained simply by sintering	3	0	
8102951000	Bars and rods	8	0	
8102952000	Profiles	8	0	
8102953000	Plates, sheets and strip	8	0	
8102954000	Foil	8	0	
8102961000	Spiral filament for electric bulbs or electronic bulbs	8	0	
8102969000	Other	8	0	
8102970000	Waste and scrap	0	0	
8102990000	Other	8	0	
8103201000	Unwrought	3	0	
8103202000	Powders	3	0	
8103300000	Waste and scrap	0	0	
8103900000	Other	8	0	
8104110000	Containing at least 99.8 % by weight of magnesium	3	0	
8104190000	Other	3	0	
8104200000	Waste and scrap	0	0	
8104301000	Raspings, turnings and granules	8	0	
8104302000	Powders	8	0	
8104901000	Bars and rods	8	0	
8104909000	Other	8	0	
8105201000	Unwrought cobalt	3	0	
8105202000	Cobalt mattes and other intermediate products of cobalt metallurgy	3	0	
8105203000	Powders	3	0	
8105300000	Waste and scrap	3	0	
8105900000	Other	3	0	
8106001010	Unwrought bismuth	3	0	
8106001020	Waste and scrap	3	0	
8106001030	Powders	3	0	
8106009000	Other	3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107201000	Unwrought cadmium	3	0	
8107202000	Powders	3	0	
8107300000	Waste and scrap	3	0	
8107900000	Other	3	0	
8108201000	Unwrought	3	0	
8108202000	Powders	3	0	
8108300000	Waste and scrap	3	0	
8108901000	Plates and strips	8	0	
8108902000	Tubes and pipes	8	0	
8108909000	Other	8	0	
8109201000	Unwrought	3	0	
8109202000	Powders	3	0	
8109300000	Waste and scrap	3	0	
8109901010	Tubes and pipes	0	0	
8109901020	Plates, sheets and strips	0	0	
8109901030	Bars	0	0	
8109901090	Other	0	0	
8109909000	Other	3	0	
8110100000	Unwrought antimony; powders	3	0	
8110200000	Waste and scrap	3	0	
8110900000	Other	3	0	
8111000000	Manganese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	3	0	
8112120000	Unwrought; powders	3	0	
8112130000	Waste and scrap	3	0	
8112190000	Other	3	0	
8112210000	Unwrought; powders	3	0	
8112220000	Waste and scrap	3	0	
8112290000	Other	3	0	
8112510000	Unwrought; powders	3	0	
8112520000	Waste and scrap	3	0	
8112590000	Other	3	0	
8112921000	Germanium	3	0	
8112922000	Vanadium	3	0	
8112923000	Gallium	3	0	
8112924000	Hafnium	3	0	
8112925000	Indium	3	0	
8112926000	Niobium(Columbium)	3	0	
8112927000	Rhenium	3	0	
8112929000	Other	3	0	
8112991000	Germanium	3	0	
8112992000	Vanadium	3	0	
8112993000	Gallium	3	0	
8112994000	Hafnium	3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112995000	Indium	3	0	
8112996000	Niobium(Columbium)	3	0	
8112997000	Rhenium	3	0	
8112999000	Other	3	0	
8113000000	Cermets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	3	0	
8201100000	Spades and shovels	8	0	
8201200000	Forks	8	0	
8201300000	Mattocks, picks, hoes and rakes	8	0	
8201400000	Axes, bill hooks and similar hewing tools	8	0	
8201500000	Secateurs and similar one-handed pruners and shears (including poultry shears)	8	0	
8201600000	Hedge shears, two-handed pruning shears and similar two-handed shears	8	0	
8201901000	Scythes and sickles	8	0	
8201902000	Hay knives	8	0	
8201903000	Timber wedges	8	0	
8201909000	Other	8	0	
8202101000	For wood	8	0	
8202102000	For metal	8	0	
8202109000	Other	8	3	
8202200000	Band saw blades	8	0	
8202310000	With working part of steel	8	3	
8202391000	With working part of tungsten carbide	8	0	
8202392010	For machines sawing semiconductor wafer or device into each unit	8	0	
8202392090	Other	8	0	
8202393000	With working part of other materials	8	0	
8202399000	Parts	8	0	
8202400000	Chain saw blades	8	0	
8202911000	Hack-saw blades	8	0	
8202919000	Other	8	5	
8202990000	Other	8	3	
8203101000	For saw blades	8	0	
8203109000	Other	8	0	
8203201000	Plier (including cutting pliers)	8	5	
8203202000	Pincer	8	0	
8203203000	Tweezers	8	3	
8203204000	Nail pullers	8	0	
8203209000	Other	8	0	
8203300000	Metal cutting shears and similar tools	8	3	
8203401000	Pipe cutters	8	0	
8203402000	Bolt croppers and clippers	8	0	
8203403000	Perforating punches	8	0	
8203409000	Other	8	3	
8204110000	Non-adjustable	8	0	
8204120000	Adjustable	8	0	
8204200000	Interchangeable spanner sockets, with or without handles	8	0	
8205101000	For drilling	8	0	
8205102000	For threading	8	0	
8205103000	For tapping	8	0	
8205109000	Other	8	3	
8205200000	Hammers and sledge hammers	8	0	
8205300000	Planes, chisels, gouges and similar cutting tools for working wood	8	5	
8205400000	Screwdrivers	8	0	
8205510000	Household tools	8	0	
8205591000	Glaziers' diamond	8	0	
8205592000	Soldering irons	8	0	
8205593000	Grease guns	8	0	
8205595000	Tools for mining and public works	8	0	
8205596000	Tools for cement workers and painters	8	3	
8205597000	Watch makers' tools	8	0	
8205599000	Other	8	3	
8205600000	Blow lamps	8	0	
8205701000	Vices	8	0	
8205702000	Clamps	8	5	
8205709000	Other	8	3	
8205801000	Anvils	8	3	
8205802000	Portable forges	8	0	
8205803000	Hand or pedal-operated grinding wheels with frameworks	8	3	
8205809000	Other	8	0	
8205900000	Sets of articles of two or more of the foregoing subheadings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206000000	Tools of two or more of the headings 82.02 to 82.05, put up in sets for retail sale	8	5	
8207130000	With working part of cermets	8	0	
8207191000	With working part of other materials	8	3	
8207199000	Parts	8	0	
8207201000	For drawing	8	0	
8207202000	For extruding	8	0	
8207301000	For pressing	8	0	
8207302000	For stamping	8	0	
8207303000	For punching	8	0	
8207309000	Other	8	0	
8207401000	For tapping	8	0	
8207402000	For threading	8	0	
8207409000	Other	8	0	
8207501010	Of high speed steel	8	0	
8207501090	Other	8	5	
8207502000	Brace bits	8	0	
8207509000	Other	8	5	
8207601000	Reamers	8	3	
8207602000	Laps	8	0	
8207603000	Broaches	8	0	
8207609000	Other	8	3	
8207701000	Gear cutters	8	5	
8207702000	Milling cutters	8	0	
8207703000	Gear cutting hobs	8	0	
8207704000	Rotary files	8	3	
8207709000	Other	8	0	
8207801000	Tools for lathes	8	3	
8207809000	Other	8	3	
8207901000	Diamond tools	8	3	
8207909000	Other	8	3	
8208100000	For metal working	8	0	
8208200000	For wood working	8	0	
8208300000	For kitchen appliances or for machines used by the food industry	8	0	
8208400000	For agricultural, horticultural or forestry machines	8	0	
8208900000	Other	8	0	
8209001010	Of tungsten carbide, treated with gamma coating	8	5	
8209001040	Of cermets	8	0	
8209001090	Others	8	0	
8209002010	Of tungsten carbide	8	3	
8209002040	Of cermets	8	0	
8209002090	Other	8	3	
8210001000	Mills and grinders	8	0	
8210002000	Extractors and pressers	8	0	
8210003000	Beaters and mixers	8	0	
8210004000	Slicers and cutters	8	0	
8210005000	Openers, corkers and sealers	8	0	
8210008000	Other domestic food-processing appliances	8	0	
8210009000	Parts	8	0	
8211100000	Sets of assorted articles	8	0	
8211910000	Table knives having fixed blades	8	0	
8211920000	Other knives having fixed blades	8	0	
8211930000	Knives having other than fixed blades	8	0	
8211940000	Blades	8	0	
8211950000	Handles of base metal	8	0	
8212100000	Razors	8	0	
8212200000	Safety razor blades, including razor blade blanks in strips	8	0	
8212900000	Other parts	8	0	
8213001000	Ordinary scissors	8	0	
8213002010	For tailors and dressmakers	8	0	
8213002020	For hairdressers	8	0	
8213002090	Other	8	0	
8213003000	Manicure scissors	8	0	
8213004000	Scissor blades	8	0	
8213009000	Other	8	0	
8214101000	Pencil sharpeners	8	0	
8214109000	Other	8	0	
8214200000	Manicure or pedicure sets and instruments (including nail files)	8	0	
8214901000	Hair clippers	8	0	
8214902000	Butchers' or kitchen cleavers, choppers and mincing knives	8	0	
8214909000	Other	8	0	
8215100000	Sets of assorted articles containing at least one article plated with precious metal	8	0	
8215200000	Other sets of assorted articles	8	0	
8215911000	Spoons	8	0	
8215912000	Forks	8	0	
8215913000	Ladles and skimmers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215914000	Fish-knives and butter-knives	8	0	
8215915000	Tongs of all kinds	8	0	
8215919000	Other	8	0	
8215991000	Spoons	8	0	
8215992000	Forks	8	0	
8215993000	Ladles and skimmers	8	0	
8215994000	Fish-knives and butter-knives	8	0	
8215995000	Tong of all kinds	8	0	
8215999000	Other	8	0	
8301100000	Padlocks	8	0	
8301200000	Locks of a kind used for motor vehicles	8	0	
8301300000	Locks of a kind used for furniture	8	0	
8301401010	Digital door locks	8	0	
8301401090	Other	8	0	
8301409000	Other	8	0	
8301500000	Clasps and frames with clasps, incorporating locks	8	0	
8301600000	Parts	8	0	
8301700000	Keys presented separately	8	0	
8302100000	Hinges	8	0	
8302200000	Castors	8	0	
8302300000	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motor vehicles	8	0	
8302411000	Suitable for doors or windows	8	0	
8302419000	Other	8	0	
8302420000	Other, suitable for furniture	8	0	
8302491000	Suitable for trunks, suitcases, or similar travel goods	8	0	
8302499000	Other	8	0	
8302500000	Hat-racks, hat-pegs, brackets and similar fixtures	8	0	
8302600000	Automatic door closers	8	0	
8303001000	Safes	8	0	
8303009000	Other	8	0	
8304000000	Filing cabinets, card-index cabinets, paper trays, paper rests, pen trays, office-stamp stands and similar office or desk equipment, of base metal, other than office furniture of heading 94.03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305100000	Fittings for loose-leaf binders or files	8	0	
8305200000	Staples in strips	8	0	
8305900000	Other, including parts	8	0	
8306100000	Bells, gongs and the like	8	0	
8306210000	Plated with precious metal	8	0	
8306290000	Other	8	0	
8306301000	Photograph, picture or similar frames	8	0	
8306302000	Mirrors of base metal	8	0	
8307100000	Of iron or steel	8	0	
8307900000	Of other base metal	8	0	
8308101000	Hooks	8	0	
8308102000	Eyes and eyelets	8	0	
8308200000	Tubular or bifurcated rivets	8	0	
8308901000	Clasps and frames with clasps	8	0	
8308902000	Buckles and buckle-clasps	8	0	
8308903000	Beads	8	0	
8308904000	Spangles	8	0	
8308909000	Other	8	0	
8309100000	Crown corks	8	0	
8309901000	Easy opener end	8	0	
8309909000	Other	8	0	
8310000000	Sign-plates, name-plates, address-plates and similar plates, numbers, letters and other symbols, of base metal, excluding those of heading 94.05	8	0	
8311101000	For use in manufacturing semiconductor	8	0	
8311109000	Other	8	0	
8311201000	For use in manufacturing semiconductor	8	0	
8311209000	Other	8	0	
8311301000	For use in manufacturing semiconductor	8	0	
8311309010	Lead-tin alloy solders	8	0	
8311309090	Other	8	0	
8311901000	For use in manufacturing semiconductor	8	0	
8311909000	Other	8	0	
8401100000	Nuclear reactors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401200000	Machinery and apparatus for isotopic separation, and parts thereof	0	0	
8401300000	Fuel elements (cartridges), non-irradiated	0	0	
8401400000	Parts of nuclear reactors	0	0	
8402110000	Watertube boilers with a steam production exceeding 45t per hour	8	3	
8402120000	Watertube boilers with a steam production not exceeding 45t per hour	8	0	
8402191000	Heating medium boiler	8	0	
8402199000	Other	8	0	
8402200000	Super-heated water boilers	8	0	
8402901000	Of steam and other vapour generating boilers	8	0	
8402902000	Of super-heated water boilers	8	0	
8403101000	Central heating boilers, using fuel oil	8	0	
8403102000	Central heating boilers, using coal or coke	8	0	
8403103000	Central heating boilers, using gas	8	0	
8403109000	Other	8	0	
8403900000	Parts	8	0	
8404101000	Economisers	8	0	
8404102000	Super-heaters	8	0	
8404103000	Soot removers	8	0	
8404104000	Gas recoverers	8	0	
8404109000	Other	8	0	
8404200000	Condensers for steam or other vapour power units	8	0	
8404901000	Of condensers for boilers	8	0	
8404902000	Of condensers for vapour engines and power units	8	0	
8404909000	Other	8	0	
8405101000	Producer gas generators	8	0	
8405102000	Water gas generators	8	3	
8405103000	Acetylene gas generators	8	0	
8405104000	Oxygen generators	8	3	
8405109000	Other	8	0	
8405901000	Of producer gas generators	8	0	
8405902000	Of water gas generators	8	0	
8405903000	Of acetylene gas generators	8	0	
8405904000	Of oxygen generators	8	0	
8405909000	Other	8	0	
8406103000	Of an output exceeding 2 MW	5	0	
8406109000	Other	5	0	
8406811000	Of an output exceeding 40 MW but not exceeding 100 MW	5	0	
8406812000	Of an output exceeding 100 MW but not exceeding 300 MW	5	5	
8406813000	Of an output exceeding 300 MW	5	5	
8406820000	Of an output not exceeding 40 MW	5	0	
8406901000	Of steam turbines for marine propulsion	8	0	
8406909000	Other	8	3	
8407100000	Aircraft engines	0	0	
8407210000	Outboard motors	8	0	
8407290000	Other	8	3	
8407311000	For motor-cycles	8	0	
8407319000	Other	8	0	
8407321000	For motor-cycles	8	0	
8407329000	Other	8	0	
8407331000	For motor-cycles	8	0	
8407339000	Other	8	0	
8407341000	For motor-cycles	8	0	
8407349000	Other	8	0	
8407901000	For railway locomotives	0	0	
8407909000	Other	8	0	
8408101000	With a rating not exceeding 300 kW	8	0	
8408102000	With a rating more than 300 kW, not exceeding 2,000 kW	8	0	
8408103000	With a rating more than 2,000 kW	8	0	
8408201000	Of a cylinder capacity not exceeding 1,000cc	8	0	
8408202000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1,000cc but not exceeding 2,000cc	8	0	
8408203000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2,000cc but not exceeding 4,000cc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408204000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4,000cc but not exceeding 10,000cc	8	0	
8408205000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10,000cc	8	0	
8408901010	Internal combustion engines for railway locomotives	0	0	
8408901090	Other	5	0	
8408909010	Internal combustion engines for ships	8	0	
8408909021	For generating of a power not less than 400 kW (Of a rpm 1,500 or 1,800)	4	0	
8408909029	Other	8	0	
8408909030	Internal combustion engines for heading 84.29	8	0	
8408909090	Other	8	0	
8409100000	For aircraft engines	5	0	
8409911000	For vehicles of Chapter 87	8	0	
8409912000	For outboard motors	8	0	
8409919000	Other	8	0	
8409991000	For railway locomotives and rolling stock	5	0	
8409992000	For vehicles of Chapter 87	8	3	
8409993010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s with a rating not exceeding 300 kW	8	0	
8409993020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s with a rating exceeding 300 kW, but not exceeding 2,000 kW	8	0	
8409993030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s with a rating exceeding 2,000 kW	8	0	
8409999010	For generating	8	3	
8409999090	Other	8	3	
8410111000	Hydraulic turbines	0	0	
8410119000	Other	8	7	
8410120000	Of a power exceeding 1,000 kW but not exceeding 10,000 kW	0	0	
8410130000	Of a power exceeding 10,000 kW	0	0	
8410901010	For water turbines	0	0	
8410901090	Other	8	0	
8410909010	For water turbines	0	0	
8410909090	Other	8	0	
8411111000	For aircraft	3	0	
8411119010	For marine	8	0	
8411119090	Other	8	0	
8411121000	For aircraft	3	0	
8411129010	For marine	8	0	
8411129090	Other	8	0	
8411211000	For aircraft	3	0	
8411219010	For marine	8	0	
8411219090	Other	8	0	
8411221000	For aircraft	3	0	
8411229010	For marine	8	0	
8411229090	Other	8	0	
8411811000	For aircraft	3	0	
8411819010	For marine	8	0	
8411819090	Other	8	0	
8411821000	For aircraft	3	0	
8411829010	For marine	8	0	
8411829090	Other	8	3	
8411911000	For aircraft	3	0	
8411919000	Other	8	3	
8411991000	For aircraft	3	0	
8411999000	Other	8	3	
8412101010	Ram-jet or pulsejet engines	5	0	
8412101090	Other	5	0	
8412109000	Other	8	0	
8412211000	Hydraulic cylinder	8	3	
8412219000	Other	8	3	
8412290000	Other	8	0	
8412310000	Linear acting (cylinders)	8	0	
8412390000	Other	8	0	
8412800000	Other	8	3	
8412901010	Ram-jet or pulse-jet engines	5	0	
8412901090	Other	5	0	
8412902000	Of water engines	0	0	
8412909000	Other	8	0	
8413110000	Pumps for dispensing fuel or lubricants, of the type used in filling-stations or in garages	8	0	
8413190000	Other	8	7	
8413200000	Hand pumps, other than those of subheading 8413.11 or 8413. 19	8	0	
8413301000	For aircraft	8	0	
8413302000	For railway locomotive	8	0	
8413303000	For marine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413304000	For vehicles falling within Chapter 87	8	3	
8413309000	Other	8	0	
8413400000	Concrete pumps	8	0	
8413504000	Pumps to be used with swimming pools	8	0	
8413509010	Plunger pumps	8	0	
8413509020	Piston pumps	8	5	
8413509030	Diaphram pumps	8	0	
8413509090	Other	8	5	
8413604000	Pumps to be used with swimming pools	8	0	
8413609010	Gear pumps	8	0	
8413609020	Vane pumps	8	0	
8413609030	Screw pumps	8	0	
8413609090	Other	8	5	
8413703000	Pumps to be used with swimming pools	8	0	
8413709010	Turbine pumps	8	0	
8413709020	Volute pumps	8	0	
8413709090	Other	8	5	
8413811000	Pumps to be used with swimming pools	8	0	
8413819000	Other	8	3	
8413820000	Liquid elevators	8	3	
8413911000	Of pumps for dispensing fuel or lubricants	8	5	
8413912000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	8	3	
8413913000	Of reciprocating pumps	8	3	
8413914000	Of centrifugal pumps	8	3	
8413915000	Of rotary pumps	8	3	
8413919000	Other	8	3	
8413920000	Of liquid elevators	8	0	
8414101000	For aircrafts	8	0	
8414109010	For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for making semiconductor devices(other than those of an ultimate vacuum less than 9×10-³Torr)	3	0	
8414109090	Other	8	3	
8414200000	Hand- or foot-operated air pumps	8	0	
8414301000	Of a power requirement less than 11 kW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414302000	Of a power requirement not less than 11 kW	8	0	
8414400000	Air compressors mounted on a wheeled chassis for towing	8	3	
8414511000	For aircrafts	8	0	
8414519000	Other	8	0	
8414591000	For aircrafts	8	0	
8414599000	Other	8	3	
8414601000	For aircrafts	8	0	
8414609000	Other	8	0	
8414801000	Hoods having a maximum horizontal side exceeding 120 cm	8	0	
8414809110	For aircrafts	8	0	
8414809190	Other	8	3	
8414809210	Of a power requirement less than 74.6 kW	8	5	
8414809220	Of a power requirement not less than 74.6 kW, less than 373 kW	8	3	
8414809230	Of a power not less than 373 kW	8	3	
8414809900	Other	8	3	
8414901000	Of fans and hoods	8	0	
8414909010	Of compressors used in refrigerating equipment	8	0	
8414909020	Of air or gas compressors (excluding for refrigerating equipment)	8	3	
8414909090	Other	8	3	
8415101011	Of a power less than 11 kW	8	0	
8415101012	Of a power not less than 11 kW	8	0	
8415101021	Of a power less than 11 kW	8	0	
8415101022	Of a power not less than 11 kW	8	0	
8415102010	Of a power less than 11 kW	8	0	
8415102020	Of a power not less than 11 kW	8	0	
8415200000	Of a kind used for persons, in motor vehicles	8	0	
8415810000	Incorporating a refrigerating unit and a valve for reversal of the cooling/heat cycle (reversible heat pumps)	8	5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415820000	Other, incorporating a refrigerating unit	8	3	
8415830000	Not incorporating a refrigerating unit	8	3	
8415900000	Parts	8	0	
8416101000	Of the maximum consumption capacity of fuel not more than 200 ℓ per hour	8	3	
8416102000	Of the maximum consumption capacity of fuel exceeding 200 ℓ, but less than 1,500 ℓ per hour	8	0	
8416103000	Of the maximum consumption capacity of fuel not less than 1,500 ℓ per hour	8	0	
8416201000	Furnace burners for pulverised solid fuel	8	0	
8416202000	Furnace burners for gas	8	7	
8416209000	Other	8	7	
8416300000	Mechanical stokers, including their mechanical grates, mechanical ash dischargers and similar appliances	8	0	
8416901000	Of furnace burners	8	7	
8416909000	Other	8	7	
8417101010	For iron-ores	8	0	
8417101090	Other	8	0	
8417102010	For iron or steel	8	5	
8417102090	Other	8	3	
8417200000	Bakery ovens, including biscuit ovens	8	0	
8417801010	For cements	8	0	
8417801020	For glasses	8	0	
8417801030	For ceramics	8	0	
8417801090	Other	8	3	
8417802000	Laboratory type	8	3	
8417809000	Other	8	3	
8417900000	Parts	8	0	
8418101010	Of a capacity not exceeding 200 ℓ	8	0	
8418101020	Of a capacity exceeding 200 ℓ but not exceeding 400 ℓ	8	0	
8418101030	Of a capacity exceeding 400 ℓ	8	0	
8418109000	Other	8	0	
8418211000	Of a capacity less than 200 ℓ	8	0	
8418212000	Of a capacity not less than 200 ℓ, but less than 400 ℓ	8	0	
8418213000	Of a capacity not less than 400 ℓ	8	0	
8418291000	Absorption-type, electrical	8	0	
8418299000	Other	8	0	
8418300000	Freezers of the chest type, not exceeding 800 ℓ capacity	8	0	
8418400000	Freezers of the upright type, not exceeding 900 ℓ capacity	8	3	
8418501000	Show-cases	8	0	
8418509000	Other	8	3	
8418610000	Heat pumps other than air conditioning machines of heading 84.15	8	3	
8418691000	Blood storage refrigerators	8	3	
8418692010	Ice-cream making machines	8	0	
8418692020	Ice-cuber	8	0	
8418692030	Water cooler	8	0	
8418692090	Other	8	0	
8418693000	Heat pumps	8	0	
8418910000	Furniture designed to receive refrigerating or freezing equipment	8	0	
8418991000	Of house hold type refrigerators	8	0	
8418999000	Other	8	3	
8419110000	Instantaneous gas water heaters	8	0	
8419190000	Other	8	3	
8419200000	Medical, surgical or laboratory sterilisers	0	0	
8419310000	For agricultural products	8	3	
8419320000	For wood, paper pulp, paper or paperboard	8	0	
8419391000	Spin dryers for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for making semiconductor devices	3	0	
8419399000	Other	8	7	
8419400000	Distilling or rectifying plant	8	3	
8419501000	For aircrafts	8	0	
8419509000	Other	8	3	
8419600000	Machinery for liquefying air or other gases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419810000	For making hot drinks or for cooking or heating food	8	0	
8419891000	Polymerization autoclaves for man-made fibre making	8	0	
8419899010	Heating plant and machinery	8	0	
8419899020	Cooling plant and machinery	8	3	
8419899030	Evaporating plant and machinery	8	0	
8419899040	Condensing plant and machinery	8	0	
8419899050	Sollar-collectors and equipments	8	0	
8419899060	Constant high or low temperature chambers	8	3	
8419899070	Constant temperature and humidity chambers	8	5	
8419899080	Air-conditioner	8	3	
8419899090	Other	8	0	
8419901000	Of polymerization autoclaves for man-made fibre making	8	0	
8419909010	Of instantaneous or storage water heaters	8	0	
8419909020	Of making hot drinks or for cooking or heating food machinery and equipment	8	5	
8419909030	Of air-conditioning machinery, plant and equipment	8	3	
8419909040	Of medical, surgical or laboratory sterilisers	0	0	
8419909090	Other	8	3	
8420101000	For paper making	8	3	
8420102000	For textile fabrics	8	0	
8420103000	For leather	8	0	
8420104000	For rubber or plastic	8	3	
8420109000	Other	8	0	
8420910000	Cylinders	8	0	
8420990000	Other	8	0	
8421110000	Cream separators	8	0	
8421120000	Clothes-dryers	8	0	
8421191000	For medical, surgical or laboratory use	8	3	
8421192000	For food industry use	8	0	
8421193000	For petro-chemical industry use	8	0	
8421199000	Other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421211000	Of the household type	8	0	
8421219010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to be used with swimming pools	8	0	
8421219020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making semiconductor devices	3	0	
8421219090	Other	8	3	
8421220000	For filtering or purifying beverages other than water	8	5	
8421231000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for vehicles of Chapter 87	8	0	
8421232000	For aircrafts	8	0	
8421239000	Other	8	0	
8421291000	For dairy industry	8	0	
8421292000	For the treatment of harmful waste water	8	3	
8421293000	For the purpose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0	0	
8421294000	For aircrafts	8	0	
8421299000	Other	8	5	
8421311000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for vehicles of Chapter 87	8	0	
8421312000	For aircrafts	8	0	
8421319000	Other	8	3	
8421391000	For the household type	8	3	
8421392000	For purifying exhaust gas for vehicles of Chapter 87	8	3	
8421399010	For the treatment of harmful exhaust gas	8	3	
8421399020	For the purpose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0	0	
8421399030	For aircrafts	8	0	
8421399090	Other	8	3	
8421910000	Of centrifuges, including centrifugal dryers	8	0	
8421991000	For purifying exhaust gas for vehicles of Chapter 87	8	0	
8421999010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8	0	
8421999020	Filter for purifying machinery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421999030	For the purpose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0	0	
8421999090	Other	8	0	
8422110000	Of the household type	8	0	
8422190000	Other	8	3	
8422200000	Machinery for cleaning or drying bottles or other containers	8	0	
8422301000	Machinery for filling bottles or other containers	8	0	
8422302000	Machinery for closing or sealing bottles or other containers	8	0	
8422303000	Machinery for capsuling or labelling bottles or other containers	8	5	
8422304000	Machinery for aerating beverages	8	0	
8422309000	Other	8	0	
8422404000	Heat shrink wrapping machinery	8	0	
8422409010	Automatic wrapping machinery	8	0	
8422409020	Automatic pack tiers	8	0	
8422409030	Vacuum packers	8	0	
8422409090	Other	8	0	
8422901000	Of dish washing machines	8	3	
8422902000	Of other packing or wrapping machinery	8	7	
8422909000	Other	8	7	
8423100000	Personal weighing machines, including baby scales; household scales	8	0	
8423201000	Conveyer scale	8	0	
8423202000	Feed meter or feed weighers	8	0	
8423209000	Other	8	0	
8423300000	Constant weight scales and scales for discharging a predetermined weight of material into a bag or container, including hopper scales	8	0	
8423810000	Having a maximum weighing capacity not exceeding 30 kg	8	0	
8423820000	Having a maximum weighing capacity exceeding 30 kg but not exceeding 5,000 kg	8	0	
8423891000	Truck scale	8	0	
8423899000	Other	8	3	
8423901010	Weights in the accuracy class	8	0	
8423901090	Other	8	0	
8423909000	Parts of weighing machinery	8	0	
8424100000	Fire extinguishers, whether or not charged	8	3	
8424201000	Spray guns	8	3	
8424202010	Of robot type	8	3	
8424202090	Other	8	3	
8424209000	Other	8	3	
8424301000	Steam or sand blasting machines	8	0	
8424302000	High-pressure steam cleaners	8	0	
8424309000	Other	8	0	
8424811000	Self-propelled sprayers	8	0	
8424812000	Other sprayers	8	3	
8424819000	Other	8	3	
8424891000	For the purpose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0	0	
8424899000	Other	8	7	
8424901000	Of fire extinguishers	8	3	
8424902000	Of spray guns	8	7	
8424903000	Of sprayers	8	0	
8424909010	For the purpose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0	0	
8424909090	Other	8	0	
8425111010	Chain blocks	0	0	
8425111090	Other	0	0	
8425112010	Chain blocks	0	0	
8425112090	Other	0	0	
8425190000	Other	0	0	
8425311000	Pit-head winding gear; winches specially designed for use underground	0	0	
8425319000	Other	0	0	
8425391000	Pit-head winding gear; winches specially designed for use underground	0	0	
8425399000	Other	0	0	
8425410000	Built-in jacking systems of a type used in garages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425421000	Of a freight-lifting capacity not exceeding 10 metric tons	0	0	
8425422000	Of a freight-lifting capacity exceeding 10 metric tons	0	0	
8425491000	Of a freight-lifting capacity not exceeding 10 metric tons	0	0	
8425492000	Of a freight-lifting capacity exceeding 10 metric tons	0	0	
8426110000	Overhead travelling cranes on fixed support	0	0	
8426121000	Mobile lifting frames on tyres	0	0	
8426122000	Straddle carriers	0	0	
8426190000	Other	0	0	
8426200000	Tower cranes	0	0	
8426301000	Portal cranes	0	0	
8426302000	Pedestal jib cranes	0	0	
8426410000	On tyres	0	0	
8426491000	Of telescopic boom type	0	0	
8426492000	Of latticed boom type	0	0	
8426499000	Other	0	0	
8426910000	Designed for mounting on road vehicles	0	0	
8426991000	Ships' derricks	0	0	
8426999000	Other	0	0	
8427101000	Of counter balance type	8	7	
8427102000	Of non counter balance type	8	3	
8427109000	Other	8	3	
8427201010	With a loading capacity not more than 3 metric tons	8	5	
8427201020	With a loading capacity more than 3 metric tons	8	3	
8427209000	Other	8	3	
8427901000	Hand pallet trucks	8	5	
8427909000	Other	8	0	
8428101000	Lifts	0	0	
8428102000	Skip hoists	0	0	
8428201000	Pneumatic elevators	0	0	
8428202000	Pneumatic conveyors	0	0	
8428310000	Specially designed for underground use	0	0	
8428320000	Other, bucket type	0	0	
8428331010	Of a lifting speed less than 240m per minute	0	0	
8428331020	Of a lifting speed not less than 240m per minute	0	0	
8428332000	Conveyors	0	0	
8428390000	Other	0	0	
8428401000	Escalators	0	0	
8428402000	Moving walkways	0	0	
8428600000	Teleferics, chair-lifts, ski-draglines; traction mechanisms for funiculars	0	0	
8428901000	Mine wagon pushers, locomotive or wagon traversers, wagon tippers and similar railway wagon handling equipment	0	0	
8428909000	Other	0	0	
8429111000	Bulldozers	0	0	
8429112000	Angledozers	0	0	
8429190000	Other	0	0	
8429200000	Graders and levellers	0	0	
8429300000	Scrapers	0	0	
8429401000	Tamping machines	0	0	
8429402000	Road rollers	0	0	
8429511010	Loaders	0	0	
8429511020	Backhoe loaders	0	0	
8429511030	Skid-steer loaders	0	0	
8429511090	Other	0	0	
8429519000	Other	0	0	
8429521010	Wheel type	0	0	
8429521020	Track type	0	0	
8429521090	Other	0	0	
8429529000	Other	0	0	
8429591000	Mechanical shovel	0	0	
8429599000	Other	0	0	
8430100000	Pile-drivers and pile-extractors	0	0	
8430200000	Snow-ploughs and snow-blowers	0	0	
8430310000	Self-propelled	0	0	
8430390000	Other	0	0	
8430411000	Boring machines	0	0	
8430412000	Sinking machines	0	0	
8430491000	Test boring machines	0	0	
8430499000	Other	0	0	
8430500000	Other machinery, self-propelled	0	0	
8430610000	Tamping or compacting machinery	0	0	
8430690000	Other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431100000	Of machinery of heading 84.25	0	0	
8431200000	Of machinery of heading 84.27	8	0	
8431310000	Of lifts, skip hoists or escalators	0	0	
8431390000	Other	0	0	
8431411000	Of excavaters	0	0	
8431419000	Other	0	0	
8431420000	Bulldozer or angledozer blades	0	0	
8431430000	Parts for boring or sinking machinery of subheading 8430.41 or 8430.49	0	0	
8431491000	Hydraulic breaker	0	0	
8431492000	Crushers	0	0	
8431499000	Other	0	0	
8432100000	Ploughs	0	0	
8432210000	Disc harrows	0	0	
8432291000	Scarifiers	0	0	
8432292000	Weeders	0	0	
8432299000	Other	0	0	
8432301000	Seeders	0	0	
8432302000	Planters	0	0	
8432303000	Transplanters	0	0	
8432309000	Other	0	0	
8432401000	Manure spreaders	0	0	
8432402000	Fertiliser distributors	0	0	
8432800000	Other machinery	0	0	
8432901000	Of ploughs	0	0	
8432902000	Of automatic cultivators	0	0	
8432909000	Other	0	0	
8433110000	Powered, with the cutting device rotating in a horizontal plane	0	0	
8433190000	Other	0	0	
8433200000	Other mowers, including cutter bars for tractor mounting	0	0	
8433300000	Other haymaking machinery	0	0	
8433400000	Straw or fodder balers, including pick-up balers	0	0	
8433510000	Combine harvester-threshers	0	0	
8433520000	Other threshing machinery	0	0	
8433530000	Root or tuber harvesting machines	0	0	
8433590000	Other	0	0	
8433601000	Eggs grading machines	0	0	
8433609010	Grading machines for agricultural produce	0	0	
8433609090	Other	0	0	
8433901000	Of combine harvester-threshers	0	0	
8433902000	Of hay or grass mowers	0	0	
8433909000	Other	0	0	
8434100000	Milking machines	0	0	
8434201000	Homogenisers	0	0	
8434209000	Other	0	0	
8434901000	Of milking machines	0	0	
8434902000	Of homogenisers	0	0	
8434909000	Other	0	0	
8435101000	Presses for the extraction of fruit juice	8	0	
8435102000	Crushers for the extraction of fruit juice	8	0	
8435103000	Homogenisers for the preparation of fruit juice	8	0	
8435109000	Other	8	3	
8435900000	Parts	8	0	
8436101000	Feed cutter	8	0	
8436102000	Feed grinder, mill or crusher	8	0	
8436103000	Feed mixer	8	3	
8436109000	Other	8	0	
8436211000	Incubators	8	0	
8436219000	Other	8	0	
8436290000	Other	8	0	
8436800000	Other machinery	8	3	
8436910000	Of poultry-keeping machinery or poultry incubators and brooders	8	0	
8436990000	Other	8	0	
8437101000	Forage-grass seed selectors	8	0	
8437109000	Other	8	0	
8437801000	Machinery used in the milling industry	8	0	
8437802000	Machinery for the working of cereals or dried leguminous vegetables	8	0	
8437901000	Of machines for cleaning, sorting or grading seed, grain or dried leguminous vegetables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437909000	Other	8	0	
8438101000	Bakery machinery	8	0	
8438109000	Other	8	3	
8438200000	Machinery for the manufacture of confectionery, cocoa or chocolate	8	3	
8438300000	Machinery for sugar manufacture	8	0	
8438400000	Brewery machinery	8	0	
8438501000	Machinery used in meat preparation	8	3	
8438509000	Other	8	3	
8438600000	Machinery for the preparation of fruits, nuts or vegetables	8	3	
8438801000	Machines for preparing fish, shell fish, etc	8	0	
8438809000	Other	8	3	
8438900000	Parts	8	5	
8439101000	Grinders	8	0	
8439102000	Cutters	8	0	
8439103000	Strainers	8	0	
8439104000	Press-pate machines	8	0	
8439105000	Beaters	8	0	
8439109000	Other	8	0	
8439201000	Machines for forming paper	8	0	
8439202000	Paper making machine	8	0	
8439209000	Other	8	3	
8439301000	Reeling machines	8	0	
8439302000	Machines for working surface	8	0	
8439303000	Machines for impregnating paper or paperboard	8	0	
8439309000	Other	8	0	
8439910000	Of machinery for making pulp of fibrous cellulosic material	8	3	
8439990000	Other	8	3	
8440101000	Book-sewing machines	8	0	
8440102000	Leaf-folding machines for book-binding	8	0	
8440109000	Other	8	0	
8440901000	Of book-sewing machines	8	0	
8440909000	Other	8	5	
8441100000	Cutting machines	8	0	
8441201000	Machines for making bags or sacks	8	0	
8441202000	Machines for making envelopes	8	0	
8441300000	Machines for making cartons, boxes, cases, tubes, drums or similar containers, other than by moulding	8	0	
8441400000	Machines for moulding articles in paper pulp, paper or paperboard	8	0	
8441801000	Paper or paperboard trimming machines	8	0	
8441809000	Other	8	3	
8441900000	Parts	8	3	
8442301000	Machinery and apparatus for type-founding	8	0	
8442302000	Special moulding presses	8	0	
8442303000	Acid etching machines	8	0	
8442304000	Phototype-setting and composing machines	8	0	
8442305000	Machinery,apparatus and equipment for type-setting or composing by other processes,with or without founding device	8	0	
8442309000	Other	8	0	
8442401000	Of machinery and apparatus for type-setting	8	0	
8442402000	Of machinery and apparatus for type-founding	8	0	
8442409000	Other	8	0	
8442500000	Plates, cylinders and other printing components; plates, cylinders and lithographic stones, prepared for printing purposes (for example, planed, grained or polished)	8	3	
8443110000	Offset printing machinery, reel fed	8	0	
8443120000	Offset printing machinery, sheet-fed, office type (using sheets with one side not exceeding 22 cm and the other side not exceeding 36 cm in the unfolded state)	8	0	
8443130000	Other offset printing machinery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443140000	Letterpress printing machinery, reel fed, excluding flexographic printing	8	0	
8443150000	Letterpress printing machinery, other than reel fed, excluding flexographic printing	8	0	
8443160000	Flexographic printing machinery	8	0	
8443170000	Gravure printing machinery	8	0	
8443191000	Textile printing machines	8	0	
8443192000	Other printing machines of a type used for printing a repetitive design, repetitve words or overall colour on textiles, leather, wallpaper, wrapping paper, linoleum or other materials	8	0	
8443199000	Other	8	3	
8443311010	Laser beam printer	0	0	
8443311020	Dot-matrix printer	0	0	
8443311030	ink-jet printer	0	0	
8443311090	Other	0	0	
8443312000	Facsimile machine which perform one or more of the functions of printing or copying	0	0	
8443313010	Operating by reproducing the original image directly onto the copy (direct process)	0	0	
8443313020	Operating by reproducing the original image via an intermediate onto the copy (indirect process)	8	0	
8443314000	Ink-jet printing machines, other than subheading 8443.31.10	8	0	
8443321010	Laser beam printer	0	0	
8443321020	Dot-matrix printer	0	0	
8443321030	Ink-jet printer	0	0	
8443321090	Other	0	0	
8443322000	Facsimile machine	0	0	
8443323000	Teleprinters	0	0	
8443324010	Operating by reproducing the original image directly onto the copy (direct process)	0	0	
8443324020	Operating by reproducing the original image via an intermediate onto the copy (indirect process)	8	0	
8443325010	For the purpose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0	0	
8443325090	Other	8	3	
8443391010	For the purpose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0	0	
8443391090	Other	8	0	
8443392010	Operating by reproducing the original image directly onto the copy (direct process)	0	0	
8443392020	Operating by reproducing the original image via an intermediate onto the copy (indirect process)	8	7	
8443393010	Incorporating an optical system	0	0	
8443393020	Of the contact type	8	0	
8443394000	Thermo-copying apparatus	8	0	
8443399000	Other	8	0	
8443911010	Automatic feeders	8	0	
8443911020	Folders, gummers, preforators and staplers	8	0	
8443911030	Serial numbering machines	8	0	
8443911090	Other	8	0	
8443919000	Other	8	0	
8443991000	Of subheading 8443.31.10 or 8443.32.10	0	0	
8443992000	Of facsimile machines	0	0	
8443993000	Of teleprinters	0	0	
8443994010	Automatic document feeders	0	0	
8443994020	Paper feeders	0	0	
8443994030	Sorters	0	0	
8443994090	Others	0	0	
8443995000	Of subheading 8443.31.4000, 8443.32.5010, 8443.32.5090, 8443.39.1010 or 8443.39.1090	8	0	
8443999000	Other	8	3	
8444001000	Machines for extruding man-made textiles	5	3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444002000	Machines for drawing man-made textiles	5	0	
8444003000	Machines for texturing man-made textiles	5	0	
8444004000	Machines for cutting man-made textiles	5	0	
8444009000	Other	5	0	
8445110000	Carding machines	5	0	
8445120000	Combing machines	5	0	
8445130000	Drawing or roving machines	5	0	
8445191000	Blowing and mixing machines	5	0	
8445192000	Lap machines	5	0	
8445193000	Cotton gin	8	0	
8445199000	Other	5	0	
8445201010	Fine spinning frames	5	3	
8445201090	Other	5	0	
8445202010	Fine spinning frames	5	0	
8445202090	Other	5	0	
8445203000	For silk	5	0	
8445209000	Other	5	0	
8445301000	For filament yarns	5	0	
8445302000	For spun yarns	5	0	
8445309000	Other	5	0	
8445401000	Cone winders	5	0	
8445402000	Cheese winders	5	0	
8445409000	Other	5	0	
8445901000	Warping machines	8	0	
8445902000	Warp sizing machines	8	0	
8445903000	Drawing-in machines	8	0	
8445904000	Warp tying-in machines	8	0	
8445909000	Other	8	0	
8446100000	For weaving fabrics of a width not exceeding 30 cm	8	0	
8446211000	For cotton	8	0	
8446212000	For wool	8	0	
8446213000	For silk	8	0	
8446219000	Other	8	0	
8446290000	Other	8	0	
8446301010	For cotton	8	0	
8446301020	For silk	8	0	
8446301030	For towel	8	0	
8446301090	Other	8	3	
8446302010	For cotton	8	0	
8446302020	For silk	8	0	
8446302030	For towel	8	0	
8446302090	Other	8	0	
8446303010	For cotton	8	0	
8446303020	For silk	8	0	
8446303030	For towel	8	0	
8446303090	Other	8	0	
8446309010	For cotton	8	0	
8446309020	For silk	8	0	
8446309030	For towel	8	0	
8446309090	Other	8	0	
8447111000	Stocking knitting machines	8	0	
8447119000	Other	8	0	
8447120000	With cylinder diameter exceeding 165 mm	8	0	
8447201010	Hand-knitting machines (including semi- automatic flat knitting machines)	8	0	
8447201020	Automatic flat knitting machines	8	3	
8447201090	Other	8	0	
8447202010	Raschel knitting machines	8	3	
8447202020	Tricot knitting machines	8	0	
8447202090	Other	8	0	
8447209000	Other	8	0	
8447901000	Lace machines	8	0	
8447902010	Automatic embroidery machines	8	0	
8447902090	Other	8	0	
8447903000	Machines for making knotted net	8	0	
8447909000	Other	8	0	
8448111000	Dobbies	8	0	
8448112000	Jacquards	8	0	
8448113000	Card punching machines	8	0	
8448119000	Other	8	0	
8448191000	Warp beam stands or creels	8	0	
8448192000	Automatic stop motions	8	0	
8448193000	Warp tyers	8	0	
8448199010	Auxiliary machines for making yarn (excluding cotton gin)	5	3	
8448199090	Other	8	0	
8448201000	Extruding nipples	5	0	
8448209000	Other	5	0	
8448310000	Card clothing	8	0	
8448321000	For carding machine(excluding garnet wires)	5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448329000	Other	8	0	
8448331000	Spindle flyers	5	0	
8448339010	Spindle	8	0	
8448339020	Spinning ring	8	0	
8448339030	Ring travellers	8	0	
8448391000	Warp beams	8	0	
8448399000	Other	8	0	
8448420000	Reeds for looms, healds and heald-frames	8	3	
8448491000	Shuttles	8	0	
8448499000	Other	8	0	
8448511000	Hoisery needles	8	0	
8448512000	Needles for embroidery machines	8	0	
8448513000	Needles for lace machines	8	0	
8448519000	Other	8	3	
8448590000	Other	8	3	
8449001010	Machinery for making felt hats	8	0	
8449001090	Other	8	0	
8449002000	Blocks for making hats	8	0	
8449009000	Parts	8	3	
8450110000	Fully-automatic machines	8	0	
8450120000	Other machines, with built-in centrifugal drier	8	0	
8450190000	Other	8	3	
8450200000	Machines, each of a dry linen capacity exceeding 10 kg	8	0	
8450900000	Parts	8	0	
8451100000	Dry-cleaning machines	8	0	
8451210000	Each of a dry linen capacity not exceeding 10 kg	8	0	
8451290000	Other	8	0	
8451301000	Steam presses	8	0	
8451309000	Other	8	0	
8451401000	Washing machines	8	0	
8451402000	Bleaching machines	8	0	
8451403000	Dyeing machines	8	0	
8451501000	Reeling unreeling machines	8	0	
8451502000	Cutting machines	8	3	
8451509000	Other	8	3	
8451801000	Heat treating machines	8	0	
8451802000	Stentering machines	8	0	
8451803000	Mercerising machines	8	0	
8451809010	Shrinking machines	8	0	
8451809020	Coating or impregnating machines	8	0	
8451809030	Raising machines	8	0	
8451809040	Padding machines	8	0	
8451809090	Other	8	0	
8451901000	Of dry cleaning machines	8	0	
8451902000	Of drying machines	8	0	
8451909000	Other	8	0	
8452101010	For straight stitch	8	0	
8452101020	For zigzag stitch	8	0	
8452101030	Of free arm type	8	0	
8452101090	Other	8	0	
8452102000	Of manual type	8	3	
8452211000	For manufacturing shoes	8	0	
8452212000	For sewing sacks	8	0	
8452213000	For sewing leather or other thick stuffs	8	0	
8452214000	For sewing furs	8	0	
8452219000	Other	8	0	
8452291000	For manufacturing shoes	8	0	
8452292000	For sewing sacks	8	0	
8452293000	For sewing leather or other thick stuffs	8	0	
8452294000	For sewing furs	8	0	
8452299000	Other	8	0	
8452300000	Sewing machine needles	8	0	
8452400000	Furniture, bases and covers for sewing machines and parts thereof	8	0	
8452900000	Other parts of sewing machines	8	0	
8453101000	Machinery for preparing hides, skins or leather	8	0	
8453102000	Machinery for tanning hides, skins or leather	8	0	
8453103000	Machinery for working hides, skins or leather	8	0	
8453201000	Machinery for making footwear	8	0	
8453202000	Machinery for repairing footwear	8	0	
8453800000	Other machinery	8	0	
8453900000	Parts	8	0	
8454100000	Converters	8	3	
8454200000	Ingot moulds and ladles	8	0	
8454301010	Die-casting machines	8	3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454301090	Other	8	0	
8454309000	Other	8	0	
8454901000	Of converters	8	0	
8454909000	Other	8	0	
8455100000	Tube mills	8	0	
8455210000	Hot or combination hot and cold	8	0	
8455220000	Cold	8	0	
8455301000	Of casting	8	3	
8455302000	Of forging	8	3	
8455309000	Other	8	0	
8455900000	Other parts	8	3	
8456103000	Operated by laser processes	8	0	
8456109000	Other	8	7	
8456200000	Operated by ultrasonic processes	8	3	
8456301010	Wire-cut machine,operated by electrodischarge processes	8	0	
8456301090	Other	8	0	
8456309000	Other	8	0	
8456900000	Other	8	0	
8457101000	Of vertical type	8	7	
8457102000	Of horizontal type	8	7	
8457103000	Of double column type	8	5	
8457109000	Other	8	5	
8457200000	Unit construction machines (single station)	8	0	
8457300000	Multi-station transfer machines	8	0	
8458110000	Numerically controlled	8	0	
8458190000	Other	8	0	
8458910000	Numerically controlled	8	0	
8458990000	Other	8	5	
8459100000	Way-type unit head machines	8	0	
8459210000	Numerically controlled	8	0	
8459291000	Radial drilling machines	8	0	
8459292000	Upright drilling machines	8	0	
8459293000	Multi-spindle drilling machines	8	0	
8459299000	Other	8	3	
8459310000	Numerically controlled	8	0	
8459390000	Other	8	3	
8459401000	Jig boring machines	8	0	
8459402000	Horizontal boring machines	8	3	
8459409000	Other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459510000	Numerically controlled	8	3	
8459590000	Other	8	0	
8459611000	Bed type milling machines	8	0	
8459612000	Planing milling machines	8	0	
8459619000	Other	8	0	
8459691000	Bed type milling machines	8	0	
8459692000	Planing milling machines	8	0	
8459693000	Universal tool milling machines	8	0	
8459694000	Profile milling machines	8	3	
8459699000	Other	8	0	
8459701000	Tapping machines	8	0	
8459709000	Other threading machines	8	0	
8460110000	Numerically controlled	8	3	
8460190000	Other	8	0	
8460211000	Cylindrical grinders	8	0	
8460212000	Internal grinders	8	0	
8460213000	Centerless grinders	8	3	
8460214000	Profile grinders	8	3	
8460219000	Other	8	0	
8460291000	Cylindrical grinders	8	0	
8460292000	Internal grinders	8	0	
8460293000	Centerless grinders	8	3	
8460294000	Profile grinders	8	0	
8460299000	Other	8	3	
8460310000	Numerically controlled	8	0	
8460390000	Other	8	3	
8460401000	Honing machines	8	7	
8460402000	Lapping machines	8	3	
8460900000	Other	8	3	
8461200000	Shaping or slotting machines	8	5	
8461300000	Broaching machines	8	0	
8461401010	Numerically controlled	8	3	
8461401090	Other	8	0	
8461402000	Gear grinding or gear finishing machines	8	3	
8461500000	Sawing or cutting-off machines	8	0	
8461900000	Other	8	3	
8462101000	Air hammer	8	0	
8462109000	Other	8	5	
8462210000	Numerically controlled	8	3	
8462290000	Other	8	0	
8462310000	Numerically controlled	8	0	
8462390000	Other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462411000	Punching machines (including combined shearing machines)	8	0	
8462412000	Notching machines	8	0	
8462491000	Punching machines (including combined shearing machines)	8	0	
8462492000	Notching machines	8	0	
8462911000	Of the maximum pressure not more than 100 metric tons	8	0	
8462912000	Of the maximum pressure more than 100 metric tons, but not more than 300 metric tons	8	0	
8462913000	Of the maximum pressure more than 300 metric tons, but not more than 1000 metric tons	8	0	
8462914000	Of the maximum pressure more than 1000 metric tons	8	0	
8462991010	Of the maximum pressure not more than 30 metric tons	8	0	
8462991020	Of the maximum pressure more than 30 metric tons, but not more than 100 metric tons	8	0	
8462991030	Of the maximum pressure more than 100 metric tons, but not more than 300 metric tons	8	0	
8462991040	Of the maximum pressure more than 300 metric tons, but not more than 600 metric tons	8	0	
8462991050	Of the maximum pressure more than 600 metric tons, but not more than 1,500 metric tons	8	0	
8462991090	Other	8	0	
8462999000	Other	8	0	
8463100000	Draw-benches for bars, tubes, profiles, wire or the like	8	0	
8463200000	Thread rolling machines	8	0	
8463300000	Machines for working wire	8	0	
8463900000	Other	8	5	
8464100000	Sawing machines	8	5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464201000	For working optical or spectacle glass	8	0	
8464202000	For working other glass	8	0	
8464209000	Other	8	0	
8464901000	Machine-tools for cold working glass	8	0	
8464902000	Machine-tools for working concrete	8	0	
8464903000	Machine-tools for working ceramics	8	0	
8464909000	Other	8	0	
8465101000	For working wood	8	5	
8465109000	Other	8	0	
8465911000	For working wood	8	0	
8465919000	Other	8	0	
8465921000	For working wood	8	0	
8465929000	Other	8	0	
8465931000	For working wood	8	0	
8465939000	Other	8	0	
8465941000	For working wood	8	0	
8465949000	Other	8	0	
8465951000	For working wood	8	0	
8465959000	Other	8	0	
8465961000	For working wood	8	0	
8465969000	Other	8	0	
8465991000	For working wood	8	3	
8465999000	Other	8	3	
8466100000	Tool holders and self-opening dieheads	8	5	
8466201000	For aircrafts	8	0	
8466209000	Other	8	7	
8466300000	Dividing heads and other special attachments for machine-tools	8	0	
8466910000	For machines of heading 84.64	8	0	
8466920000	For machines of heading 84.65	8	5	
8466930000	For machines of headings 84.56 to 84.61	8	3	
8466940000	For machines of heading 84.62 or 84.63	8	0	
8467111000	Rock drillers	8	3	
8467112000	Screw drivers	8	0	
8467113000	Grinders	8	3	
8467114000	Impact wrench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467115000	Drill	8	0	
8467119000	Other	8	3	
8467191000	Rock drillers	8	0	
8467199000	Other	8	3	
8467210000	Drills of all kinds	8	0	
8467220000	Saws	8	0	
8467290000	Other	8	0	
8467810000	Chain saws	8	0	
8467891010	Of subheading 8430.49 or 8479.10	0	0	
8467891020	Of subheading 8479.89.9010, 8479.89.9030 or 8479.89.9091	8	0	
8467891090	Other	8	3	
8467899000	Other	8	3	
8467910000	Of chain saws	8	0	
8467920000	Of pneumatic tools	8	0	
8467990000	Other	8	3	
8468100000	Hand-held blow pipes	8	0	
8468201000	Gas welding machines	8	5	
8468202000	Gas automatic cutting machines	8	0	
8468209000	Other	8	3	
8468800000	Other machinery and apparatus	8	0	
8468900000	Parts	8	7	
8469001010	Word-processing machines	0	0	
8469001020	Automatic typewriters	8	0	
8469002000	Other typewriters, electric	8	0	
8469003000	Other typewriters, non-electric	8	0	
8470103010	Less than 17 digits	0	0	
8470103020	Not less than 17 digits	0	0	
8470104010	Of subheading 8472.90.9000	0	0	
8470104090	Other	0	0	
8470211000	Less than 17 digits	0	0	
8470212000	Not less than 17 digits	0	0	
8470290000	Other	0	0	
8470300000	Other calculating machines	0	0	
8470500000	Cash registers	0	0	
8470901000	Postage-franking machines	0	0	
8470902000	Ticket-issuing machines	0	0	
8470903000	Accounting machines	0	0	
8470909000	Other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471300000	Portable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weighing not more than 10 kg, consisting of at least a central processing unit, a keyboard and a display	0	0	
8471411000	Those of not less than 64bit in delivering data of CPU and of not less than 64mega byte in capacity of main memory storage	0	0	
8471412000	Those of not less than 32bit in delivering data of CPU and of not less than 16mega byte in capacity of main memory storage	0	0	
8471419000	Other	0	0	
8471491010	Those of not less than 64bit in delivering data of CPU and of not less than 64mega byte in capacity of main memory storage	0	0	
8471491020	Those of not less than 32bit in delivering data of CPU and of not less than 16mega byte in capacity of main memory storage	0	0	
8471491090	Other	0	0	
8471499000	Other	0	0	
8471501000	Those of not less than 64 bit in delivering data of CPU and of not less than 64 mega byte in capacity of main memory storage	0	0	
8471502000	Those of not less than 32 bit in delivering data of CPU and of not less than 16 mega byte in capacity of main memory storage	0	0	
8471509000	Other	0	0	
8471601010	Character (mark) readers	0	0	
8471601020	Key entry system	0	0	
8471601030	Mouse	0	0	
8471601040	Scanners	0	0	
8471601090	Other	0	0	
8471602000	Output units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471603020	Videotex or teletex	0	0	
8471603030	Voice input output devices	0	0	
8471603090	Other	0	0	
8471701000	Main storage units (RAM & ROM)	0	0	
8471702010	Floppy disk drive	0	0	
8471702020	Hard disk drive	0	0	
8471702031	Compact disc drive	0	0	
8471702032	Digital video disc drive	0	0	
8471702033	Blu-ray disk drive	0	0	
8471702039	Other	0	0	
8471702090	Other	0	0	
8471709000	Other	0	0	
8471800000	Other units of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0	0	
8471900000	Other	0	0	
8472100000	Duplicating machines	8	0	
8472301000	Letters sorting machines	8	0	
8472302000	Machines for cancelling postage stamps	8	0	
8472309000	Other	8	3	
8472901010	Automatic banknote or coin dispensers	0	0	
8472901020	Automatic banknote or coin receiving machines	0	0	
8472901040	Automatic banknote or coin dispensing and receiving machines	0	0	
8472901050	Coin-counting or wrapping machines	8	0	
8472901090	Other	8	0	
8472902000	Automatic sheet making machines for duplicating and printing	8	0	
8472903000	Ticket-issuing machines	8	0	
8472904000	Pencil-sharpening machines	8	0	
8472905000	Paper shredders	8	0	
8472906000	Addressing machines and address plate embossing machines	8	0	
8472909000	Other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473101000	Flat panel displays for word-processing machines(including LCD, EL(electro luminescence), plasma and other technologies)	0	0	
8473102000	PCA(printed circuit assemblies) for word-processing machines, which consist of one or more printed circuits of heading 85.34	0	0	
8473109000	Other	8	0	
8473210000	Of the electronic calculating machines of subheading 8470.10, 8470.21 or 8470.29	0	0	
8473291000	Of machines of subheading 8470.30	0	0	
8473293000	Of machines of subheading 8470.50	0	0	
8473294000	Of machines of subheading 8470.90	0	0	
8473301000	Magnetic head	0	0	
8473302000	Main board, designed to be equipped with microprocessor unit	0	0	
8473303000	Case for computer	0	0	
8473304010	Sound cards	0	0	
8473304020	Video cards	0	0	
8473304030	Multimedia Cards	0	0	
8473304050	Communication interface cards	0	0	
8473304060	DRAM modules	0	0	
8473304090	Other	0	0	
8473309010	Central processing unit(CPU) for computer, not classified in heading 85.42	0	0	
8473309090	Other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473401000	Flat panel displays for automatic teller machines other than subheadings 8472.90.1050 and 8472.90.1090(including LCD, EL(electro luminescence), plasma and other technologies)	0	0	
8473402000	PCA(printed circuit assemblies) for automatic teller machines other than subheadings 8472.90.1050 and 8472.90.1090, which consist of one or more printed circuits of heading 85.34	0	0	
8473409000	Other	8	0	
8473501000	Suitable for use principally with the electronic calculating machines of subheading 8470.10, 8470.21 or 8470.29	0	0	
8473509000	Other	0	0	
8474100000	Sorting, screening, separating or washing machines	0	0	
8474201000	Of crushing or grinding capacity not exceeding 20 tons per hour	0	0	
8474209000	Other	0	0	
8474311000	Batcher plants	0	0	
8474319000	Other	0	0	
8474321000	Asphalt plants	0	0	
8474329000	Other	0	0	
8474390000	Other	0	0	
8474801000	Machines for forming foundry moulds of sands	0	0	
8474802000	Machinery for agglomerating, moulding or shaping	0	0	
8474809000	Other	0	0	
8474900000	Parts	0	0	
8475100000	Machines for assembling electric or electronic lamps, tubes or valves or flashbulbs, in glass envelopes	8	0	
8475210000	Machines for making optical fibres and preforms thereof	8	0	
8475291000	For the manufacture of plate glass	8	0	
8475292000	For the manufacture of glass-bottle	8	0	
8475299000	Other	8	0	
8475901000	Of machines for the manufacture of plate glass	8	0	
8475909000	Other	8	3	
8476210000	Incorporating heating or refrigerating devices	8	0	
8476290000	Other	8	0	
8476811000	For selling foods	8	0	
8476819000	Other	8	0	
8476891000	For selling foods	8	0	
8476893000	For selling cigarettes	8	0	
8476894000	For money-changing	8	0	
8476899000	Other	8	0	
8476900000	Parts	8	0	
8477101000	For rubber-industry	8	0	
8477102000	For plastic-industry	8	0	
8477201000	For rubber-industry	8	0	
8477202000	For plastic-industry	8	0	
8477300000	Blow moulding machines	8	0	
8477400000	Vacuum moulding machines and other thermoforming machines	8	0	
8477510000	For moulding or retreading pneumatic tyres or for moulding or otherwise forming inner tubes	8	0	
8477590000	Other	8	3	
8477800000	Other machinery	8	0	
8477900000	Parts	8	3	
8478100000	Machinery	8	0	
8478900000	Parts	8	5	
8479101000	Mortar or concrete spreading machines	0	0	
8479102000	Other	0	0	
8479109000	Others	0	0	
8479200000	Machinery for the extraction or preparation of animal or fixed vegetable fats or oils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479300000	Presses for the manufacture of particle board or fibre building 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 and other machinery for treating wood or cork	8	0	
8479400000	Rope or cable-making machines	8	0	
8479501000	Of subheading 8479.81, 8479.82, 8479.89.9010, 8479.89.9030, 8479.89.9040, 8479.89.9060 or 8479.89.9091	8	0	
8479502000	Of subheading 8479.89.9080	8	0	
8479509000	Other	8	3	
8479600000	Evaporative air coolers	8	0	
8479811000	Metal scouring machines	8	3	
8479812010	For the purpose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3	0	
8479812090	Other	8	0	
8479813000	Winding machines	8	0	
8479814000	Insulating or protective material covering machines	8	0	
8479819000	Other	8	0	
8479821000	Mixers	8	3	
8479822000	Crushers and grinders	8	3	
8479823000	Homogenisers	8	0	
8479824000	Agitators	8	0	
8479829000	Other	8	5	
8479891010	Air purifiers (having functions of humidifying and dehumidifying)	8	0	
8479891090	Other	8	0	
8479899010	Presses or extruding machines	8	0	
8479899020	Machines and appliances for ships or fishing industry	8	0	
8479899030	Eyeletting or tubular rivetting machines	8	0	
8479899040	Automatic magnetic tape assembling machines	8	0	
8479899050	Coating machines	8	0	
8479899060	Auto-door operators	8	5	
8479899080	Automatic winding machines for fishing	8	0	
8479899091	For vehicles of Chapter 87	8	3	
8479899092	Surface mount machines for electronic parts	8	7	
8479899099	Other	8	3	
8479901010	Of air coolers (including parts of carcoolers)	8	0	
8479901020	Of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of the household type	8	0	
8479901030	Of vehicles of Chapter 87	8	3	
8479902000	Of those specified in subheading 8479.89.9080	8	0	
8479903000	Of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for making semi-conductor devices	8	0	
8479909010	Of machinery for public works, building or the like	8	0	
8479909020	Of machinery for the extraction or preparation of animal or fixed vegetable fats or oils	8	0	
8479909030	Of rope or cable-making machines	8	0	
8479909040	Of machines and appliances for treating metal	8	3	
8479909050	Of mixing, kneading, crushing, grinding, screening, sifting, homogenising, emulsifying or stirring machines	8	3	
8479909060	Of presses or extruding machines	8	5	
8479909070	Of machines and appliances of ships or fishing industry	8	0	
8479909080	Of automatic magnetic tape assembling machines	8	0	
8479909090	Other	8	3	
8480100000	Moulding boxes for metal foundry	8	0	
8480200000	Mould bases	8	0	
8480300000	Moulding patterns	8	0	
8480410000	Injection or compression types	8	0	
8480490000	Other	8	0	
8480500000	Moulds for glass	8	0	
8480600000	Moulds for mineral materials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480710000	Injection or compression types	8	0	
8480790000	Other	8	0	
8481100000	Pressure-reducing valves	8	0	
8481201000	Valves for oleohydraulic transmissions	8	0	
8481202000	Valves for pneumatic transmissions	8	0	
8481300000	Check (nonreturn) valves	8	0	
8481400000	Safety or relief valves	8	0	
8481801010	Electrically operated	8	7	
8481801020	Hydraulic pressure operated	8	7	
8481801030	Other automatically controlled	8	7	
8481801090	Other	8	3	
8481802000	Taps, cocks and traps	8	5	
8481809000	Other	8	7	
8481901000	Actuators	8	3	
8481909000	Other	8	3	
8482101000	Of the inside diameter exceeding 100 ㎜	8	0	
8482102000	Of the inside diameter not exceeding 100 ㎜	13	7	
8482200000	Tapered roller bearings, including cone and tapered roller assemblies	8	3	
8482300000	Spherical roller bearings	8	7	
8482400000	Needle roller bearings	8	7	
8482500000	Other cylindrical roller bearings	8	7	
8482800000	Other, including combined ball/roller bearings	8	5	
8482910000	Balls, needles and rollers	8	7	
8482990000	Other	8	7	
8483101000	For aircrafts	3	0	
8483109010	For vehicles of Chapter 87	8	3	
8483109090	Other	8	0	
8483201000	For aircrafts	3	0	
8483209000	Other	8	3	
8483301000	For aircrafts	3	0	
8483309000	Other	8	3	
8483401010	Roller screws	3	0	
8483401090	Other	3	0	
8483409010	Gear	8	3	
8483409020	Gear boxes	8	3	
8483409030	Automatic transmissions	8	0	
8483409041	For vehicles of Chapter 87	8	3	
8483409049	Other	8	0	
8483409090	Other	8	3	
8483501000	For aircrafts	8	0	
8483509000	Other	8	0	
8483601000	For aircrafts	3	0	
8483609000	Other	8	0	
8483901000	For aircrafts	3	0	
8483909000	Other	8	0	
8484101000	For vehicles of Chapter 87	8	0	
8484109000	Other	8	3	
8484200000	Mechanical seals	8	3	
8484900000	Other	8	0	
8486101000	Spin dryers by centrifugal process	0	0	
8486102000	Apparatus for growing or pulling monocrystal boules	0	0	
8486103010	Machines for sawing monocrystal boules into slices	0	0	
8486103020	Grinding or polishing machines for processing of wafer, including lapping machines	0	0	
8486103090	Other	8	3	
8486104011	Machines for working any material by removal of material in the production of semiconductor wafers	0	0	
8486104019	Other	8	0	
8486104021	Apparatus for stripping or cleaning wafers	0	0	
8486104029	Other	8	3	
8486105010	Resistance heated furnaces and ovens	0	0	
8486105020	Furnaces and ovens functioning by induction or dielectric loss	0	0	
8486105030	Other furnaces and ovens	0	0	
8486109000	Other	8	0	
8486201000	Spin dryers by centrifugal process	0	0	
8486202100	Resistance heated furnaces and ovens	0	0	
8486202210	For the manufacture of semiconductor devices on semiconductor wafers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486202290	Other	8	0	
8486202310	Apparatus for rapid heating of semiconductor wafers	0	0	
8486202390	Other	0	0	
8486203000	Ion implanters for doping semiconductor materials	0	0	
8486204000	Machines for depositing membrance or sputtering metal on semiconductor wafers	0	0	
8486205110	For semiconductor leads	0	0	
8486205190	Other	8	0	
8486205910	For semiconductor leads	0	0	
8486205990	Other	8	0	
8486206010	Direct write-on-semiconductor wafer apparatus	0	0	
8486206020	Step and repeat aligners	0	0	
8486206090	Other	0	0	
8486207000	Apparatus for wet etching, developing, stripping or cleaning semiconductor wafers	0	0	
8486208110	Laser cutters for cutting contacting tracks in semiconductor materials	0	0	
8486208120	Machines for working any material by removal of material in the production of semiconductor wafers	0	0	
8486208190	Other	8	0	
8486208410	For dry-etching patterns on semiconductor materials	0	0	
8486208420	Apparatus for stripping or cleaning semiconductor wafers	0	0	
8486208490	Other	8	0	
8486209110	Spraying appliances for etching, stripping or cleaning semiconductor wafers	0	0	
8486209120	Deflash machines for cleaning and removing contaminants from the metal leads of semiconductor packages prior to the electroplating process	0	0	
8486209190	Other	0	0	
8486209200	Machines of coating and developing or stabilizing photoresist	0	0	
8486209310	Grinding or polishing machines for processing of semiconductor wafer, including lapping machines	0	0	
8486209320	Dicing machines for scribing or scoring semiconductor wafers	0	0	
8486209390	Other	8	0	
8486209400	Machine for washing wafers, carrier or tube	0	0	
8486209500	Machine for mounting tape on semiconductor wafers	0	0	
8486209600	Machine for sawing semiconductor wafer into chips	0	0	
8486209900	Other	8	0	
8486301000	Apparatus for wet etching, developing, stripping or cleaning	0	0	
8486302000	Apparatus for the projection or drawing of circuit patterns on sensitised flat panel display substrates	0	0	
8486303010	Operated by laser or other light or photon beam processes	8	0	
8486303020	Operated by ultrasonic processes	8	0	
8486303030	Operated by electro-discharge processes	8	0	
8486303041	Dry etcher	8	0	
8486303049	Other	8	3	
8486304010	Grinding or polishing machines	8	0	
8486304090	Other	8	0	
8486305010	Coating machines	8	0	
8486305020	Coating and developing machines	8	0	
8486305031	Operated by physical method	8	0	
8486305032	Operated by chemical method	8	0	
8486305039	Other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486306010	Seal, short, spacer or liquid crystal dispenser	8	0	
8486306020	Scribing machines	8	0	
8486306030	Panel assembler	8	0	
8486306090	Other	8	0	
8486307000	Centrifuges, including centrifugal dryers	8	0	
8486308000	Mechanical appliances for projecting, dispersing or spraying liquids or powders	8	3	
8486309020	Robots for making flat panel displays	8	3	
8486309090	Other	8	0	
8486401010	Pattern generating apparatus of a kind used for producing masks or reticles from photoresist coated substrates	0	0	
8486401020	Focused ionic-beam milling machines for removing or repairing mask and reticle	0	0	
8486401030	Machines of coating and developing or stabilizing photoresist	0	0	
8486401040	Machines and apparatus for etching, cleaning or stripping mask and reticle	8	0	
8486401090	Other	8	0	
8486402010	Die attach apparatus, tape automated bonders, and wire bonders for assembly of semiconductors	0	0	
8486402020	Machines for inserting or removing semiconductor devices	8	0	
8486402031	Encapsulation equipment for assembly of semiconductors	0	0	
8486402039	Other	8	0	
8486402040	Machines to attach solder ball on semiconductor circuit board or ceramic board	3	0	
8486402050	Apparatus designed to bond or detach wafer on ceramic block	8	0	
8486402070	Moulds for rubber or plastics of injection or compression types	0	0	
8486402080	Machines for bonding semiconductor die, washing wafers, carrier or tube	0	0	
8486402091	Machine-tools (including presses) for working metal by bending, folding, straightening, flattening, for semiconductor leads, whether or not numerically controlled	0	0	
8486402092	Machine-tools (including presses) for working metal by bending, folding, straightening, flattening, other than semiconductor leads, whether or not numerically controlled	8	3	
8486402093	Machines for forming connections(bump) on an entire wafer before dicing	8	3	
8486402094	Deflash machines for cleaning and removing contaminants from the metal leads of semiconductor packages prior to the electroplating process, for projecting, dispersing or spraying liquids or powders	0	0	
8486402095	Resistance heated electric furnaces and ovens	0	0	
8486402099	Other	8	0	
8486403010	Automated machines and apparatus for transport, handling and storage of semiconductor wafers, wafer cassettes, boxes and other material for semiconductor devices	0	0	
8486403090	Other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486901010	Of subheading 8486.10.1000, 8486.10.2000, 8486.10.3010, 8486.10.3020, 8486.10.4011, 8486.10.4021, 8486.10.5010, 8486.10.5020 or 8486.10.5030	0	0	
8486901020	Of subheading 8486.10.3090, 8486.10.4019, 8486.10.4029 or 8486.10.9000	8	3	
8486902010	Of subheading 8486.20.1000, 8486.20.2100, 8486.20.2210, 8486.20.2310, 8486.20.2390, 8486.20.3000, 8486.20.4000, 8486.20.5110, 8486.20.5910, 8486.20.6010, 8486.20.6020, 8486.20.6090, 8486.20.7000, 8486.20.8110, 8486.20.8120, 8486.20.8410, 8486.20.8420, 8486.20.9110, 8486.20.9120, 8486.20.9190, 8486.20.9200, 8486.20.9310, 8486.20.9320, 8486.20.9400, 8486.20.9500 or 8486.20.9600	0	0	
8486902020	Of subheading 8486.20.2290, 8486.20.5190, 8486.20.5990, 8486.20.8190, 8486.20.8490, 8486.20.9390 or 8486.20.9900	8	7	
8486903010	Of subheading 8486.30.1000 or 8486.30.2000	0	0	
8486903020	Of subheading 8486.30.3010, 8486.30.3020, 8486.30.3030, 8486.30.3041, 8486.30.3049, 8486.30.4010, 8486.30.4090, 8486.30.6020, 8486.30.7000, 8486.30.8000, 8486.30.9020 or 8486.30.9090	8	3	
8486903030	Of subheading 8486.30.5010, 8486.30.5020, 8486.30.5031, 8486.30.5032, 8486.30.5039, 8486.30.6010, 8486.30.6030, or 8486.30.6090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486904010	Of subheading 8486.40.1010, 8486.40.1020, 8486.40.1030, 8486.40.2010, 8486.40.2031, 8486.40.2070, 8486.40.2080, 8486.40.2091, 8486.40.2094, 8486.40.2095, 8486.40.3010, 8486.40.3090, 8486.40.4011, 8486.40.4012 or 8486.40.4020	0	0	
8486904020	Of subheading 8486.40.1040, 8486.40.1090, 8486.40.2020, 8486.40.2039, 8486.40.2040, 8486.40.2050, 8486.40.2061, 8486.40.2062, 8486.40.2063, 8486.40.2092, 8486.40.2093, 8486.40.2099 or 8486.40.9000	8	3	
8487100000	Ships' or boats' propellers and blades therefor	8	0	
8487901000	For vehicles of Chapter 87	8	5	
8487909010	Oil seal rings	8	3	
8487909090	Other	8	3	
8501101000	DC motors	8	0	
8501102000	AC motors	8	0	
8501103000	Universal AC/DC motors	8	0	
8501201000	Of an output exceeding 37.5 W, but not exceeding 100 W	8	0	
8501202000	Of an output exceeding 100 W, but not exceeding 750 W	8	0	
8501203000	Of an output exceeding 750 W	8	0	
8501311010	Of an output not exceeding 100 W	8	0	
8501311090	Other	8	0	
8501312000	DC generators	8	0	
8501321000	DC motors	8	0	
8501322000	DC generators	8	0	
8501331000	DC motors	8	0	
8501332000	DC generators	8	0	
8501341000	DC motors	8	0	
8501342000	DC generators	8	0	
8501401000	Of an output not exceeding 100 W	8	0	
8501402000	Of an output exceeding 100 W but not exceeding 750 W	8	0	
8501403000	Of an output exceeding 750 W but not exceeding 75 kW	8	0	
8501404000	Of an output exceeding 75 kW	8	0	
8501510000	Of an output not exceeding 750 W	8	0	
8501520000	Of an output exceeding 750 W but not exceeding 75 kW	8	0	
8501531000	Of an output not exceeding 375 kW	8	3	
8501532000	Of an output exceeding 375 kW but not exceeding 1500 kW	8	0	
8501534000	Of an output exceeding 1500 kW	8	0	
8501611000	Of an output not exceeding 750 VA	8	0	
8501612000	Of an output exceeding 750 VA but not exceeding 75 kVA	8	0	
8501620000	Of an output exceeding 75 kVA but not exceeding 375 kVA	8	0	
8501631000	Not less than an output equivalent to 400 kW	0	0	
8501639000	Other	8	0	
8501640000	Of an output exceeding 750 kVA	0	0	
8502111000	Of an output not exceeding 750 VA	8	0	
8502112000	Of an output exceeding 750 VA but not exceeding 75 kVA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502120000	Of an output exceeding 75 kVA but not exceeding 375 kVA	8	0	
8502131010	Not less than an output equivalent to 400 kW	0	0	
8502131090	Other	8	0	
8502132000	Of an output exceeding 750 kVA but not exceeding 3500 kVA	0	0	
8502134000	Of an output exceeding 3500 kVA	0	0	
8502201000	Of an output not exceeding 75 kVA	8	0	
8502202000	Of an output exceeding 75 kVA but not exceeding 375 kVA	8	0	
8502203010	Not less than an output equivalent to 400 kW	0	0	
8502203090	Other	8	0	
8502204000	Of an output exceeding 750 kVA	0	0	
8502311000	Of an output not exceeding 75 kVA	8	0	
8502312000	Of an output exceeding 75 kVA but not exceeding 375 kVA	8	0	
8502313000	Of an output exceeding 375 kVA but not exceeding 750 kVA	8	0	
8502314000	Of an output exceeding 750 kVA	8	0	
8502391000	Of an output not exceeding 75 kVA	8	0	
8502392000	Of an output exceeding 75 kVA but not exceeding 375 kVA	8	0	
8502393000	Of an output exceeding 375 kVA but not exceeding 750 kVA	8	0	
8502394000	Of an output exceeding 750 kVA	8	0	
8502400000	Electric rotary converters	8	0	
8503001000	Of motors	8	3	
8503002000	Of generators and of generating sets	8	0	
8503003000	Of rotary converters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504101010	Rated at not more than 1 A	8	0	
8504101020	Rated at more than 1 A but not more than 20 A	8	3	
8504102000	Rated at more than 20 A but not more than 60 A	8	0	
8504103000	Rated at more than 60 A	8	0	
8504211000	Instrument transformers	8	0	
8504219010	Having a power handling capacity not exceeding 100 kVA	8	0	
8504219020	Having a power handling capacity exceeding 100 kVA but not exceeding 650 kVA	8	0	
8504221000	Instrument transformers	8	0	
8504229010	Having a power handling capacity exceeding 650 kVA but not exceeding 1,000 kVA	8	0	
8504229020	Having a power handling capacity exceeding 1,000 kVA but not exceeding 5,000 kVA	8	0	
8504229030	Having a power handling capacity exceeding 5,000 kVA but not exceeding 10,000 kVA	8	0	
8504230000	Having a power handling capacity exceeding 10,000 kVA	8	0	
8504311000	Instrument transformers	8	0	
8504312000	Voltage regulators	8	0	
8504319010	Having a power handling capacity not exceeding 100 VA	8	0	
8504319020	Having a power handling capacity exceeding 100 VA but not exceeding 500 VA	8	0	
8504319040	Having a power handling capacity exceeding 500 VA but not exceeding 1 kVA	8	0	
8504321000	Instrument transformers	8	0	
8504322000	Voltage regulators	8	0	
8504329010	Having a power handling capacity exceeding 1 kVA but not exceeding 5 kVA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504329020	Having a power handling capacity exceeding 5 kVA but not exceeding 16 kVA	8	0	
8504331000	Instrument transformers	8	0	
8504332000	Voltage regulators	8	0	
8504339010	Having a power handling capacity exceeding 16 kVA but not exceeding 30 kVA	8	0	
8504339020	Having a power handling capacity exceeding 30 kVA but not exceeding 100 kVA	8	0	
8504339040	Having a power handling capacity exceeding 100 kVA but not exceeding 500 kVA	8	0	
8504341000	Instrument transformers	8	0	
8504342000	Voltage regulators	8	0	
8504349010	Having a power handling capacity exceeding 500 kVA but not exceeding 2,000 kVA	8	0	
8504349030	Having a power handling capacity exceeding 2,000 kVA	8	0	
8504401010	Fo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units thereof, and telecommunication apparatus	0	0	
8504401090	Other	8	0	
8504402011	Fo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units thereof, and telecommunication apparatus	0	0	
8504402019	Other	8	0	
8504402091	Fo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units thereof, and telecommunication apparatus	0	0	
8504402099	Other	8	0	
8504403010	Fo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units thereof, and telecommunication apparatus	0	0	
8504403090	Other	8	0	
8504404010	Fo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units thereof, and telecommunication apparatus	0	0	
8504404090	Other	8	0	
8504405010	Fo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units thereof, and telecommunication apparatus	0	0	
8504405090	Other	8	0	
8504409011	Fo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0	0	
8504409019	Other	0	0	
8504409091	For telecommunication apparatus	0	0	
8504409099	Other	8	0	
8504501010	Fo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units thereof, and telecommunication apparatus	0	0	
8504501090	Other	8	0	
8504502010	Fo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units thereof, and telecommunication apparatus	0	0	
8504502090	Other	8	0	
8504509010	Fo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units thereof, and telecommunication apparatus	0	0	
8504509090	Other	8	3	
8504901000	PCA(printed circuit assemblies) of subheadings 8504.40, 8504.50 which consist of one or more printed circuits of heading 85.34, fo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units thereof and telecommunication apparatus	0	0	
8504909000	Other	8	0	
8505111000	Of alnico	8	0	
8505119000	Other	8	0	
8505191000	Of iron oxide	8	0	
8505199000	Other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505200000	Electro-magnetic couplings, clutches and brakes	8	0	
8505901000	Electro-magnets	8	3	
8505902000	Electro-magnetic or permanent magnet chucks, clamps, vices and similar work holders	8	0	
8505903000	Electro-magnetic lifting heads	8	0	
8505909000	Parts	8	0	
8506101000	Manganese batteries	13	0	
8506102000	Alkali manganese batteries	13	0	
8506109000	Other	8	0	
8506300000	Mercuric oxide	8	0	
8506400000	Silver oxide	8	0	
8506500000	Lithium	8	0	
8506600000	Air-Zinc	8	0	
8506801000	Zinc oxide	8	0	
8506809000	Other	8	0	
8506900000	Parts	8	0	
8507100000	Lead-acid, of a kind used for starting piston engines	8	0	
8507200000	Other lead-acid accumulators	8	0	
8507300000	Nickel-cadmium	8	0	
8507400000	Nickel-iron	8	0	
8507801000	Nickel metal hydride	8	0	
8507802000	Lithium ion	8	0	
8507803000	Lithium polymer	8	0	
8507809000	Other	8	0	
8507901000	Seperators	8	0	
8507909000	Other	8	0	
8508110000	Of a power not exceeding 1,500 W and having a dust bag or other receptacle capacity not exceeding 20 ℓ	8	0	
8508191000	Of a kind used for domestic purposes	8	0	
8508199000	Other	8	3	
8508600000	Other vacuum cleaners	8	3	
8508701000	Of subheading 8508.11.0000 or 8508.19.1000	8	0	
8508702000	Of subheading 8508.19.9000 or 8508.60.0000	8	3	
8509400000	Food grinders and mixers; fruit or vegetable juice extractors	8	0	
8509801000	Coffee grinders	8	0	
8509802000	Ice grinders	8	0	
8509803000	Floor polishers	8	0	
8509804000	Kitchen waste disposers	8	0	
8509809000	Other	8	0	
8509900000	Parts	8	0	
8510100000	Shavers	8	0	
8510200000	Hair clippers	8	0	
8510300000	Hair-removing appliances	8	0	
8510901000	Of shavers	8	0	
8510902000	Of hair clippers	8	0	
8510903000	Of hair-removing appliances	8	0	
8511101000	For aircrafts	3	0	
8511109000	Other	8	3	
8511201000	For aircrafts	3	0	
8511209000	Other	8	3	
8511301000	For aircrafts	3	0	
8511309000	Other	8	3	
8511401000	For aircrafts	3	0	
8511409000	Other	8	3	
8511501000	For aircrafts	3	0	
8511509000	Other	8	3	
8511801000	For aircraft	3	0	
8511809000	Other	8	3	
8511901000	For aircraft	3	0	
8511909000	Other	8	3	
8512100000	Lighting or visual signalling equipment of a kind used on bicycles	8	0	
8512201000	Lighting equipment	8	0	
8512202000	Signalling equipment	8	0	
8512300000	Sound signalling equipment	8	0	
8512400000	Windscreen wipers, defrosters and demisters	8	0	
8512900000	Parts	8	0	
8513101000	Safety lamps of a kind used in mining	8	0	
8513102000	Flashlights	8	0	
8513109000	Other	8	0	
8513900000	Parts	8	0	
8514101000	For laboratory	8	0	
8514102000	For metal industry	8	0	
8514103000	For food industry	8	0	
8514109000	Other	8	0	
8514201000	For laboratory	8	0	
8514202000	For metal industry	8	0	
8514203000	For food industry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514209000	Other	8	0	
8514300000	Other furnaces and ovens	8	0	
8514401000	For the purpose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0	0	
8514409000	Other	8	0	
8514901000	For the purpose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0	0	
8514909000	Other	8	0	
8515110000	Soldering irons and guns	8	5	
8515190000	Other	8	3	
8515211010	Of robot type	8	0	
8515211090	Other	8	0	
8515212010	Of robot type	8	0	
8515212090	Other	8	3	
8515213010	Of robot type	8	0	
8515213090	Other	8	0	
8515219010	Of robot type	8	0	
8515219090	Other	8	0	
8515291000	Spot welders	8	0	
8515292000	Seam welders	8	0	
8515293000	Butt welders	8	0	
8515299000	Other	8	0	
8515311010	Of robot type	8	0	
8515311090	Other	8	0	
8515319010	Of robot type	8	0	
8515319090	Other	8	3	
8515391000	AC arc welding machines and apparatus	8	0	
8515399000	Other	8	3	
8515801000	Ultrasonic machines	8	3	
8515802000	Electron beam machines	8	0	
8515803000	Laser operated machines	8	7	
8515809000	Other	8	3	
8515901000	Of welding machines	8	3	
8515909000	Other	8	3	
8516100000	Electric instantaneous or storage water heaters and immersion heaters	8	0	
8516210000	Storage heating radiators	8	0	
8516290000	Other	8	0	
8516310000	Hair dryers	8	0	
8516320000	Other hair-dressing apparatus	8	0	
8516330000	Hand-drying apparatus	8	0	
8516400000	Electric smoothing irons	8	0	
8516500000	Microwave ovens	8	0	
8516601000	Electrical ovens	8	0	
8516602000	Electric rice cookers(including with constant warming function)	8	0	
8516609000	Other	8	0	
8516710000	Coffee or tea makers	8	0	
8516720000	Toasters	8	0	
8516791000	Electric jar	8	0	
8516799000	Other	8	0	
8516800000	Electric heating resistors	8	3	
8516900000	Parts	8	0	
8517110000	Line telephone sets with cordless handsets	0	0	
8517121010	With digital broadcasting receiver	0	0	
8517121090	Other	0	0	
8517122010	With digital broadcasting receiver	0	0	
8517122090	Other	0	0	
8517123010	With digital broadcasting receiver	0	0	
8517123090	Other	0	0	
8517124010	With digital broadcasting receiver	0	0	
8517124090	Other	0	0	
8517129010	With digital broadcasting receiver	0	0	
8517129090	Other	0	0	
8517181000	Of push button type	0	0	
8517189000	Other	0	0	
8517611000	Base stations transceiver	0	0	
8517619000	Other	0	0	
8517621000	Teleprinters	0	0	
8517622010	For public exchange	0	0	
8517622020	For private exchange	0	0	
8517622090	Other	0	0	
8517623110	Terminal equipment	0	0	
8517623120	Repeater	0	0	
8517623190	Other	0	0	
8517623210	Terminal equipment	0	0	
8517623220	Repeater	0	0	
8517623290	Other	0	0	
8517623310	Optical repeater	0	0	
8517623320	Optical terminal equipment	0	0	
8517623390	Other	0	0	
8517623410	Analog to digital, digital to analog converter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517623420	Codec (coder and decoder)	0	0	
8517623430	Modem (including modem card)	0	0	
8517623490	Other	0	0	
8517623510	FDM (frequency division modulation) type	0	0	
8517623520	TDM (time division modulation) type	0	0	
8517623590	Other	0	0	
8517623900	Other	0	0	
8517624010	Key-phone	0	0	
8517624020	Picture telegraphic apparatus	0	0	
8517624090	Other	0	0	
8517625000	Transmission apparatus for radio-telephony, radio-telegraphy	0	0	
8517626010	Printing telegraphic apparatus	0	0	
8517626020	Picture telegraphic apparatus	0	0	
8517626031	Walkie-talkie sets	0	0	
8517626039	Other	0	0	
8517626040	Facsimile transmission equipments	0	0	
8517626050	Switching apparatus for radio telecommunication	0	0	
8517626060	Repeater for radio telecommunication	0	0	
8517626090	Other	0	0	
8517627000	Other units of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0	0	
8517629000	Other	0	0	
8517691100	HF (high frequency), MF (medium frequency) or LF(low frequency) receiving apparatus	8	0	
8517691211	Portable receivers for calling alerting or paging	0	0	
8517691219	Other	8	0	
8517691290	Other	8	0	
8517691900	Other	8	0	
8517692000	Videophones	0	0	
8517699000	Other	0	0	
8517701010	Of line telephone sets	0	0	
8517701021	Key pads	0	0	
8517701022	Cases	0	0	
8517701029	Other	0	0	
8517701090	Other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517702000	Of subheading 8517.61	0	0	
8517703010	Of teleprinters	0	0	
8517703021	Of public exchange	0	0	
8517703022	Of private exchange	0	0	
8517703029	Other	0	0	
8517703031	Of co-axial cable carrier equipment	0	0	
8517703032	Of optical fibre transmission system	0	0	
8517703039	Other	0	0	
8517703041	Of picture telegraphic apparatus	0	0	
8517703049	Other	0	0	
8517703050	Of transmission apparatus for radio-telephony, radio-telegraphy	0	0	
8517703060	Transmission apparatus incorporating reception apparatus for radio-telephony, radio-telegraphy other than subheading 8517.70.10	0	0	
8517703070	Other units of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0	0	
8517703090	Other	0	0	
8517704011	Of portable receiver for calling, alerting or paging	0	0	
8517704019	Other	8	0	
8517704020	Of videophones	0	0	
8517704090	Other	8	0	
8518101000	Microphones having a frequency range of 300 Hz to 3.4KHz with a diameter of not exceeding 10mm and a height not exceeding 3 mm, for telecommunication use	0	0	
8518109000	Other	8	3	
8518210000	Single loudspeakers, mounted in their enclosures	8	5	
8518220000	Multiple loudspeakers, mounted in the same enclosure	8	5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518291000	For telecommunication use, (without housing, having a frequency range of 300 Hz to 3.4 KHz with a diameter of not exceeding 50 mm)	0	0	
8518299000	Other	8	0	
8518304000	Line telephone handsets	0	0	
8518309000	Other	8	0	
8518400000	Audio-frequency electric amplifiers	8	0	
8518500000	Electric sound amplifier sets	8	0	
8518901000	PCA(printed circuit assemblies) of subheadings 8518.10.1000, 8518.29.1000	0	0	
8518909000	Other	8	0	
8519201000	Coin - or disc- operated record-players, not incorporating a sound recording device	8	0	
8519209000	Other, not incorporating a sound recording device	8	0	
8519301000	With automatic record changing mechanism	8	0	
8519309000	Other	8	5	
8519500000	Telephone answering machines	0	0	
8519811000	Transcribing machines, not incorporating a sound recording device	8	0	
8519812100	Cassette-players, as defined in Subheading Note 1 to Chapter 85	8	0	
8519812210	For vehicles	8	0	
8519812220	Of portable type, other than as defined in Subheading Notes 1 to Chapter 85	8	5	
8519812290	Other	8	0	
8519812310	For vehicles	8	0	
8519812320	Of portable type	8	0	
8519812390	Other	8	0	
8519812900	Other	8	0	
8519813000	Dictating machines not capable of operating without an external source of power	8	0	
8519814111	For vehicles	8	0	
8519814112	Of portable type	8	5	
8519814119	Other	8	0	
8519814190	Other	8	0	
8519814210	For vehicles	8	0	
8519814220	Of portable type	8	0	
8519814290	Other	8	0	
8519814310	Of reel type	8	0	
8519814390	Other	8	0	
8519815010	Of reel type	8	0	
8519815020	Of disc type	8	0	
8519815030	Cassette-type	8	0	
8519815090	Other	8	0	
8519819000	Other sound recording apparatus,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a sound reproducing device	8	0	
8519891010	Without loudspeaker	8	0	
8519891090	Other	8	0	
8519892000	Transcribing machines, not incorporating a sound recording device	8	0	
8519893000	Decks,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a sound reproducing device	8	0	
8519899010	Other sound reproducing apparatus, not incorporating a sound recording device	8	0	
8519899020	Other sound recording apparatus,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a sound reproducing device	8	0	
8521101000	Of a width exceeding 12.7 ㎜	8	0	
8521102000	Of a width not exceeding 12.7 ㎜	8	0	
8521901000	Of disc type	8	0	
8521909000	Other	8	0	
8522100000	Pick-up cartridges	8	0	
8522901010	For audio recording	8	0	
8522901020	For video recording	8	0	
8522901090	Other	8	0	
8522902000	Laser pick-up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522909010	Flat panel displays(including LCD, EL(electro luminescence), plasma and other technologies)for telephone answering machines	0	0	
8522909020	PCA(printed circuit assemblies) of telephone answering machines, which consist of one or more printed circuits of heading 85.34	0	0	
8522909090	Other	8	0	
8523210000	Cards incorporating a magnetic stripe, whether or not recording	8	0	
8523291110	Of a width not exceeding 4 ㎜	0	0	
8523291120	Of a width exceeding 4 ㎜ but not exceeding 6.5 ㎜	0	0	
8523291130	Of a width exceeding 6.5 ㎜	0	0	
8523291210	Floppy discs	0	0	
8523291290	Other	0	0	
8523291900	Other	0	0	
8523292111	Containing computer software	0	0	
8523292119	Other	0	0	
8523292121	Containing computer software	0	0	
8523292129	Other	0	0	
8523292131	Containing computer software	0	0	
8523292139	Other	0	0	
8523292211	Those recorded video	8	0	
8523292219	Other	8	0	
8523292221	Those recorded video	8	0	
8523292229	Other	8	0	
8523292231	Those recorded video	13.0% or 34won/min(at standard speed)	0	
8523292239	Other	8	5	
8523292911	Containing computer software	0	0	
8523292919	Other	0	0	
8523292991	Those recorded video	8	0	
8523292992	For reproducing representations of instructions, data, sound, and image, recorded in a machine readable binary form, and capable of being manipulated or providing interactivity to a user, by means of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0	0	
8523292999	Other	8	0	
8523401000	Unrecorded media	0	0	
8523402111	Bearing data or instructions for use in automatic data processing equipment	0	0	
8523402119	Other	0	0	
8523402120	For reproducing sound only	8	3	
8523402131	For reproducing representations of instructions, data, sound, and image, recorded in a machine readable binary form, and capable of being manipulated or providing interactivity to a user, by means of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0	0	
8523402139	Other	8	0	
8523402911	Bearing data or instructions for use in automatic data processing equipment	0	0	
8523402919	Other	0	0	
8523402991	Those recorded video	8	0	
8523402992	For reproducing representations of instructions, data, sound, and image, recorded in a machine readable binary form, and capable of being manipulated or providing interactivity to a user, by means of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0	0	
8523402999	Other	8	0	
8523511000	Unrecorded media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523512110	Containing computer software	0	0	
8523512190	Other	0	0	
8523512910	Those recorded video	8	0	
8523512920	For reproducing representations of instructions, data, sound, and image, recorded in a machine readable binary form, and capable of being manipulated or providing interactivity to a user, by means of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0	0	
8523512990	Other	8	0	
8523521000	Cards incorporating an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 and parts thereof	0	0	
8523529000	Other and parts thereof	8	0	
8523591000	Unrecorded media	0	0	
8523592110	Containing computer software	0	0	
8523592190	Other	0	0	
8523592910	Those recorded video	8	0	
8523592920	For reproducing representations of instructions, data, sound, and image, recorded in a machine readable binary form, and capable of being manipulated or providing interactivity to a user, by means of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0	0	
8523592990	Other	8	0	
8523593000	Proximity cards and tags	0	0	
8523801000	Unrecorded media	0	0	
8523802100	Gramophone records	8	0	
8523802210	Containing computer software	0	0	
8523802290	Other	0	0	
8523802910	Those recorded video	8	0	
8523802920	For reproducing representations of instructions, data, sound, and image, recorded in a machine readable binary form, and capable of being manipulated or providing interactivity to a user, by means of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0	0	
8523802990	Other	8	0	
8525501000	Radio-broadcasting apparatus	8	3	
8525502000	Television transmission apparatus	8	0	
8525509000	Other	8	3	
8525601000	Radio-broadcasting apparatus	0	0	
8525602000	Television transmission apparatus	0	0	
8525609000	Other	0	0	
8525801010	For video tape recorder	8	0	
8525801020	For monitor television	8	0	
8525801090	Other	8	0	
8525802010	Still image video cameras	0	0	
8525802090	Other	0	0	
8525803000	Video camera recorders	0	0	
8526101000	For aircrafts	8	0	
8526109000	Other	8	0	
8526911010	For aircrafts	8	0	
8526911090	Other	8	0	
8526912010	For aircrafts	8	0	
8526912090	Other	8	0	
8526913010	For aircrafts	8	0	
8526913020	For vehicles	8	0	
8526913090	Other	8	0	
8526914000	Loran receivers	8	0	
8526919010	For aircrafts	8	0	
8526919020	For vehicles	8	0	
8526919090	Other	8	3	
8526920000	Radio remote control apparatus	8	3	
8527120000	Pocket-size radio cassette-players	8	0	
8527131000	Of cassette-type	8	0	
8527132000	Of disc type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527133000	Combined with cassette-type and disc type	8	0	
8527139000	Other	8	0	
8527190000	Other	8	5	
8527211000	Of cassette-type	8	0	
8527212000	Of disc type	8	0	
8527213000	Combined with cassette-type and disc type	8	0	
8527219000	Other	8	0	
8527290000	Other	8	0	
8527911010	Of cassette-type	8	0	
8527911020	Of disc type	8	0	
8527911030	Combined with cassette-type and disc type	8	0	
8527911090	Other	8	0	
8527919000	Other	8	0	
8527920000	Not combined with sound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but combined with a clock	8	0	
8527990000	Other	8	3	
8528410000	Of a kind solely or principally used in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system of heading 84.71	0	0	
8528491010	Television monitors specially manufactured for medical purpose	8	0	
8528491090	Other	8	0	
8528492010	Television monitors specially manufactured for medical purpose	8	0	
8528492090	Other	8	0	
8528511000	LCD(liquid crystal display) monitor	0	0	
8528519000	Other	0	0	
8528591010	Television monitors specially manufactured for medical purpose	8	0	
8528591090	Other	8	0	
8528592010	Television monitors specially manufactured for medical purpose	8	0	
8528592090	Other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528610000	Of a kind solely or principally used in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system of heading 84.71	0	0	
8528690000	Other	8	0	
8528711010	Colour	8	0	
8528711020	Black and white or other monochrome	8	0	
8528712010	Supporting reception of broadcasting of which vertical resolution is more than or equal to 720lines	8	0	
8528712090	Other	8	0	
8528719010	Colour	8	0	
8528719020	Black and white or other monochrome	8	0	
8528721010	Of analog	8	0	
8528721020	Of digital	8	0	
8528722010	Of analog	8	0	
8528722020	Of digital	8	0	
8528723010	Of analog	8	0	
8528723020	Of digital	8	0	
8528724010	Of analog	8	0	
8528724020	Of digital	8	0	
8528729000	Other	8	0	
8528731000	Of the length of fluorescent screen of braun tube under 37 cm in diagonal line	8	0	
8528732000	Of the length of fluorescent screen of braun tube not less than 37 cm but under 45.72 cm in diagonal line	8	0	
8528733000	Of the length of fluorescent screen of braun tube not less than 45.72 cm in diagonal line	8	0	
8528739000	Other	8	0	
8529101000	For radar apparatus	8	5	
8529109100	For radio navigational aid or radio remote control apparatus	8	0	
8529109210	For receiving from satellites	8	0	
8529109290	Other	8	0	
8529109300	Of a kind used with apparatus for radiotelephony and radiotelegraphy	0	0	
8529109900	Other	8	5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529901000	Of radar apparatus	8	0	
8529909100	Of radio navigational aid or radio remote control apparatus	8	0	
8529909200	Of transmission apparatus for radio-broadcasting or television	8	0	
8529909400	Of radio-broadcast receivers	8	0	
8529909500	Of television cameras	8	0	
8529909610	Tuner for colour	8	3	
8529909620	Tuner for black and white or monochrome	8	0	
8529909630	Screen for video projector	8	5	
8529909641	For plasma display panel type	8	0	
8529909649	Other	8	0	
8529909650	Other parts for black and white or monochrome	8	0	
8529909910	Of transmission apparatus incorporating reception apparatus or digital cameras (including digital still image video cameras)	0	0	
8529909920	Of subheading 8528.51, 8528.41.0000 or 8528.61.0000	0	0	
8529909990	Other	8	0	
8530101010	For ground equipment	8	0	
8530101090	Other	8	0	
8530109000	Other	8	0	
8530800000	Other equipment	8	0	
8530900000	Parts	8	0	
8531101000	Burglar alarms	8	3	
8531102000	Fire alarms	8	0	
8531103000	Gas alarms	8	5	
8531104000	Electric bells	8	0	
8531105000	Sirens	8	0	
8531109000	Other sound or signalling apparatus	8	0	
8531201010	Of mobile telephones for cellular networks	0	0	
8531201090	Other	0	0	
8531202000	Indicator panels incorporating light emitting diodes (LED)	0	0	
8531801010	Of mobile telephones for cellular networks	8	0	
8531801090	Other	8	0	
8531809000	Other	8	0	
8531901000	Of subheading 8531.10	8	5	
8531902000	Of subheading 8531.20	0	0	
8531909000	Other	8	0	
8532100000	Fixed capacitors designed for use in 50/60 Hz circuits and having a reactive power handling capacity of not less than 0.5 kvar (power capacitors)	0	0	
8532210000	Tantalum	0	0	
8532220000	Aluminium electrolytic	0	0	
8532230000	Ceramic dielectric, single layer	0	0	
8532240000	Ceramic dielectric, multilayer	0	0	
8532250000	Dielectric of paper or plastics	0	0	
8532290000	Other	0	0	
8532301000	Variable polyethylene capacitors	0	0	
8532309000	Other	0	0	
8532901000	Of fixed capacitors	0	0	
8532902000	Of variable capacitors	0	0	
8532909000	Other	0	0	
8533100000	Fixed carbon resistors, composition or film types	0	0	
8533211000	Of chip-type	0	0	
8533219000	Other	0	0	
8533291000	Of chip-type	0	0	
8533299000	Other	0	0	
8533310000	For a power handling capacity not exceeding 20 W	0	0	
8533390000	Other	0	0	
8533401000	Variable carbon resistors	0	0	
8533402000	Thermistor	0	0	
8533403000	Varistor	0	0	
8533409000	Other	0	0	
8533901000	Of variable resistors	0	0	
8533909000	Other	0	0	
8534001000	Obtained by forming with passive elements (inductances, resistors and capacitors)	0	0	
8534002000	Of tape type or obtained by forming with circuits which function as lead frames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534009000	Other	0	0	
8535100000	Fuses	8	0	
8535211000	Rated at less than 7.25 kV	8	0	
8535212000	Rated at 7.25 kV and more but less than 72.5 kV	8	0	
8535291000	Rated at less than 200 kV	8	0	
8535292000	Rated at 200 kV and more	8	0	
8535301000	Rated at less than 7.25 kV	8	0	
8535302000	Rated at 7.25 kV and more but less than 72.5 kV	8	0	
8535303000	Rated at 72.5 kV and more but less than 200 kV	8	0	
8535304000	Rated at 200 kV and more	8	0	
8535400000	Lightning arresters, voltage limiters and surge suppressors	8	0	
8535901000	Connector	8	0	
8535902000	Electrical terminal	8	0	
8535909000	Other	8	0	
8536101000	Of tube-type	8	0	
8536109000	Other	8	0	
8536200000	Automatic circuit breakers	8	0	
8536300000	Other apparatus for protecting electrical circuits	8	0	
8536410000	For a voltage not exceeding 60 V	8	0	
8536490000	Other	8	0	
8536501000	Rotary type	8	0	
8536502000	Push-button type	8	0	
8536503000	Micro-type	8	0	
8536504000	Of magnet switches (including magnetic contactors)	8	0	
8536509010	Electromechanical snap-action switches for a current not exceeding 11 A	0	0	
8536509020	Electronic AC switches consisting of optically coupled input and output circuits (Insulated thyristor AC switches)	0	0	
8536509030	Of temperature protected, consisting of a transistor and a logic chip (chip-on-chip technology) for a voltage not exceeding 1,000 V	0	0	
8536509090	Other	8	0	
8536610000	Lamp-holders	8	0	
8536691000	For co-axial cables and printed circuits	0	0	
8536699000	Other	8	5	
8536701000	Of plastics	6.5	0	
8536702000	Of ceramic wares for laboratory, chemical or other technical uses	8	0	
8536703010	Cast, moulded, stamped or forged, but not further worked	0	0	
8536703090	Other	8	0	
8536901000	Junction boxes	0	0	
8536909010	Connection and contact elements for wires and cables	0	0	
8536909090	Other	8	0	
8537101000	Switch boards	8	0	
8537102000	Automatic control panels	8	0	
8537109000	Other	8	0	
8537201000	Switch boards	8	0	
8537202000	Automatic control panels	8	0	
8537209000	Other	8	0	
8538100000	Boards, panels, consoles, desks, cabinets and other bases for the goods of heading 85.37, not equipped with their apparatus	8	0	
8538901000	Of switches	8	0	
8538902000	Of automatic circuit breakers	8	0	
8538903000	Of relays	8	0	
8538904000	Of automatic control panels	8	5	
8538909000	Other	8	0	
8539100000	Sealed beam lamp units	8	0	
8539210000	Tungsten halogen	8	0	
8539221000	Incandescent lamps	8	0	
8539222000	Decoration lamps	8	0	
8539223000	Beam lamps	8	0	
8539224000	Attracting fish lamps	8	0	
8539229000	Other	8	0	
8539290000	Other	8	0	
8539310000	Fluorescent, hot cathode	8	0	
8539321000	Mercury lamps	8	0	
8539322000	Sodium vapour lamps	8	0	
8539323000	Metal halide lamps	8	0	
8539391000	Cold cathode fluorescent lamp(CCFL)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539399000	Other	8	0	
8539410000	Arc lamps	8	0	
8539491010	Of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for making semiconductor devices	3	0	
8539491090	Other	8	0	
8539492000	Infra-red lamps	8	0	
8539901000	Of filament lamps	8	0	
8539902000	Of discharge lamps	8	0	
8539909000	Other	8	0	
8540110000	Colour	8	0	
8540120000	Black and white or other monochrome	8	0	
8540201000	Television camera tubes	8	0	
8540209000	Other	8	0	
8540400000	Data/graphic display tubes, colour, with a phosphor dot screen pitch smaller than 0.4 mm	8	0	
8540500000	Data/graphic display tubes, black and white or other monochrome	8	0	
8540601000	Colour	8	0	
8540609000	Other	8	0	
8540710000	Magnetrons	8	0	
8540720000	Klystrons	8	0	
8540790000	Other	8	0	
8540810000	Receiver or amplifier valves and tubes	8	0	
8540891000	Thermionic valves and tubes for transmitters	8	0	
8540892000	Discharge tubes	8	0	
8540893000	Digitron	8	0	
8540899000	Other	8	0	
8540911000	Deflection coils	8	0	
8540912000	Electron guns	8	0	
8540913000	Shadow mask	8	0	
8540919000	Other	8	0	
8540990000	Other	8	0	
8541101000	Chips, dice and wafers not yet cut into chips	0	0	
8541109000	Other	0	0	
8541211000	Chips, dice and wafers not yet cut into chips	0	0	
8541219000	Other	0	0	
8541291000	Chips, dice and wafers not yet cut into chips	0	0	
8541299000	Other	0	0	
8541301000	Chips, dice and wafers not yet cut into chips	0	0	
8541302000	Thyristors	0	0	
8541303000	Diacs	0	0	
8541304000	Triacs	0	0	
8541401000	Chips, dice and wafers not yet cut into chips	0	0	
8541402010	Laser devices	0	0	
8541402090	Other	0	0	
8541409010	Photovoltaic cells	0	0	
8541409020	Photovoltaic cells (photovoltaic cells, including solar cells, photodiodes, photocouples and photorelays)	0	0	
8541409030	Charge coupled devices (CCD)	0	0	
8541409090	Other	0	0	
8541501000	Chips, dice and wafers not yet cut into chips	0	0	
8541502000	Rectifier devices	0	0	
8541509000	Other	0	0	
8541601000	Crystal vibrator	0	0	
8541609000	Other	0	0	
8541901000	Lead frames	0	0	
8541902000	Of diodes	0	0	
8541903000	Of transistors	0	0	
8541909000	Other	0	0	
8542311000	Monolithic integrated circuits	0	0	
8542312000	Hybrid integrated circuits	0	0	
8542313000	Multichip integrated circuits	0	0	
8542321010	DRAM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0	0	
8542321020	SRAM (Static random access memory)	0	0	
8542321030	Flash memory	0	0	
8542321090	Other	0	0	
8542322000	Hybrid integrated circuits	0	0	
8542323000	Multichip integrated circuits	0	0	
8542331000	Monolithic integrated circuits	0	0	
8542332000	Hybrid integrated circuits	0	0	
8542333000	Multichip integrated circuits	0	0	
8542391000	Monolithic integrated circuits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542392000	Hybrid integrated circuits	0	0	
8542393000	Multichip integrated circuits	0	0	
8542901010	Lead frames	0	0	
8542901090	Other	0	0	
8542902010	Lead frames	0	0	
8542902090	Other	0	0	
8542903010	Lead frames	0	0	
8542903090	Other	0	0	
8543100000	Particle accelerators	8	0	
8543200000	Signal generators	8	0	
8543300000	Machines and apparatus for electroplating, electrolysis or electrophoresis	8	0	
8543701000	Electric fence energisers	8	0	
8543702010	Medicated water electrolysis apparatus	8	0	
8543702020	Electrical beauty appliances	8	0	
8543702030	Audio mixers	8	0	
8543702040	Equalizers	8	0	
8543702050	Ozon generator	8	0	
8543702090	Other	8	0	
8543703000	Electrical machines with translation or dictionary functions	0	0	
8543709010	High frequency amplifiers	8	0	
8543709020	Detectors, including optical sensor	8	0	
8543709030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E.N.S)	0	0	
8543709090	Other	8	3	
8543901000	Electronic microassemblies	0	0	
8543909011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OLED)	0	0	
8543909019	Other	0	0	
8543909020	PCA(printed circuit assemblies) for electrical machines with translation or dictionary functions, which consist of one or more printed circuits of heading 85.34	0	0	
8543909090	Other	8	5	
8544111000	Insulating lacquer or enamel insulated	8	0	
8544119000	Other	8	0	
8544190000	Other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544200000	Co-axial cable and other co-axial electric conductors	8	0	
8544300000	Ignition wiring sets and other wiring sets of a kind used in vehicles, aircraft or ships	8	0	
8544421010	Of a kind used for telecommunications	0	0	
8544421090	Other	8	0	
8544422010	Of a kind used for telecommunications	0	0	
8544422090	Other	8	0	
8544429010	Of a kind used for telecommunications	0	0	
8544429090	Other	8	0	
8544491011	For a voltage not exceeding 80 V	0	0	
8544491012	For a voltage exceeding 80V but not exceeding 1,000 V	8	0	
8544491090	Other	8	0	
8544492011	For a voltage not exceeding 80 V	0	0	
8544492012	For a voltage exceeding 80 V but not exceeding 1,000 V	8	0	
8544492090	Other	8	0	
8544499011	For a voltage not exceeding 80 V	0	0	
8544499012	For a voltage exceeding 80 V but not exceeding 1,000 V	8	0	
8544499090	Other	8	0	
8544601010	Plastic insulated wire	8	0	
8544601090	Other	8	0	
8544602010	Plastic insulated wire	8	0	
8544602090	Other	8	0	
8544603010	Plastic insulated wire	8	0	
8544603090	Other	8	0	
8544700000	Optical fibre cables	0	0	
8545110000	Of a kind used for furnaces	5	0	
8545190000	Other	5	0	
8545200000	Brushes	8	3	
8545901000	Carbon rods	8	0	
8545909000	Other	8	0	
8546101000	Rated at not more than 1,000 V	8	0	
8546102000	Rated at more than 1,000 V	8	0	
8546201000	Rated at not more than 1,000 V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546202000	Rated at more than 1,000 V but not more than 10 kV	8	0	
8546203000	Rated at more than 10 kV but not more than 100 kV	8	0	
8546204000	Rated at more than 100 kV but not more than 300 kV	8	0	
8546205000	Rated at more than 300 kV	8	0	
8546901000	Artificial plastic insulators	8	0	
8546909000	Other	8	0	
8547100000	Insulating fittings of ceramics	8	0	
8547200000	Insulating fittings of plastics	8	0	
8547900000	Other	8	0	
8548101000	Of subheading 3824.90	6.5	0	
8548102000	Of subheading 7204.21, 7204.29, 7204.30 or 7204.49	0	0	
8548103000	Of subheading 7404.00	0	0	
8548104010	Of subheading 7503.00	0	0	
8548104020	Of subheading 7902.00	0	0	
8548105000	Of subheading 7802.00	0	0	
8548106010	Of subheading 8107.30	3	0	
8548106020	Of subheading 8111.00	3	0	
8548107000	Of subheading 8506.10, 8506.30, 8506.40, 8506.50, 8506.60 or 8506.80	8	0	
8548109000	Other	8	0	
8548901000	Electronic microassemblies	0	0	
8548909000	Other	8	0	
8601100000	Powered from an external source of electricity	5	0	
8601200000	Powered by electric accumulators	5	0	
8602100000	Diesel-electric locomotives	0	0	
8602900000	Other	0	0	
8603101000	Coaches	5	0	
8603102000	Vans and trucks	5	0	
8603901000	Coaches	5	0	
8603902000	Vans and trucks	5	0	
8604001000	Workshops	5	0	
8604002000	Cranes	5	0	
8604003000	Testing coaches	5	0	
8604004000	Track inspection vehicles	5	0	
8604009000	Other	5	0	
8605001010	Sleeping cars	5	0	
8605001090	Other	5	0	
8605002000	Luggage vans	5	0	
8605003000	Travelling post office coaches	5	0	
8605004000	Hospital coaches	5	0	
8605009000	Other	5	0	
8606100000	Tank wagons and the like	0	0	
8606300000	Self-discharging vans and wagons, other than those of subheading 8606.10	0	0	
8606911000	Insulated or refrigerated vans and wagons, other than those of subheading 8606.10	0	0	
8606919000	Other	0	0	
8606920000	Open, with non-removable sides of a height exceeding 60 cm	0	0	
8606990000	Other	0	0	
8607110000	Driving bogies and bissel-bogies	5	0	
8607120000	Other bogies and bissel-bogies	5	0	
8607191000	Axles	5	0	
8607192000	Wheels	5	0	
8607193000	Pair of axle and wheel	5	0	
8607199000	Other	5	3	
8607210000	Air brakes and parts thereof	5	3	
8607290000	Other	5	3	
8607301000	Hooks	5	0	
8607302000	Coupling device	5	3	
8607303000	Buffers	5	3	
8607309000	Other	5	3	
8607910000	Of locomotives	5	0	
8607990000	Other	5	3	
8608001000	Railway or tramway track fixtures and fittings	8	0	
8608002000	Mechanical signalling, safety or traffic control equipment	8	0	
8608009000	Parts	8	0	
8609001000	For the transport of fluids	0	0	
8609002000	For the transport of compressed gas	0	0	
8609003000	For the transport of ordinary goods and material	0	0	
8609004000	For the transport of live animals	0	0	
8609005000	Of freezer and refrigerator	0	0	
8609009000	Other	0	0	
8701100000	Pedestrian controlled tractors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701201000	New	8	0	
8701202000	Used	8	0	
8701300000	Track-laying tractors	0	0	
8701901010	New	8	0	
8701901020	Used	8	0	
8701909110	Of less than 50HP	0	0	
8701909190	Other	0	0	
8701909900	Other	8	0	
8702101010	New	10	0	
8702101020	Used	10	0	
8702102010	New	10	0	
8702102020	Used	10	0	
8702103010	New	10	0	
8702103020	Used	10	0	
8702901010	New	10	0	
8702901020	Used	10	0	
8702902010	New	10	0	
8702902020	Used	10	0	
8702903010	New	10	0	
8702903020	Used	10	0	
8703101000	For travelling on snow	8	0	
8703102000	Golf cars	8	0	
8703109000	Other	8	0	
8703217000	New	8	0	
8703218000	Used	8	0	
8703227000	New	8	0	
8703228000	Used	8	0	
8703231010	New	8	0	
8703231020	Used	8	0	
8703239010	New	8	0	
8703239020	Used	8	0	
8703241010	New	8	0	
8703241020	Used	8	0	
8703249010	New	8	0	
8703249020	Used	8	0	
8703317000	New	8	0	
8703318000	Used	8	0	
8703321010	New	8	0	
8703321020	Used	8	0	
8703329010	New	8	0	
8703329020	Used	8	0	
8703337000	New	8	0	
8703338000	Used	8	0	
8703907000	Electric vehicle	8	0	
8703909000	Other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704100000	Dumpers designed for off-highway use	0	0	
8704211010	New	10	0	
8704211020	Used	10	0	
8704219010	Freezer and refrigerator vehicles	10	0	
8704219020	Tank lorries	10	0	
8704219090	Other	10	0	
8704221011	New	10	0	
8704221012	Used	10	0	
8704221091	New	10	0	
8704221092	Used	10	0	
8704229010	Freezer and refrigerator vehicles	10	0	
8704229020	Tank lorries	10	0	
8704229090	Other	10	0	
8704231010	New	10	0	
8704231020	Used	10	0	
8704239010	Freezer and refrigerator vehicles	10	0	
8704239020	Tank lorries	10	0	
8704239090	Other	10	0	
8704311010	New	10	0	
8704311020	Used	10	0	
8704319010	Freezer and refrigerator vehicles	10	0	
8704319020	Tank lorries	10	0	
8704319090	Other	10	0	
8704321010	New	10	0	
8704321020	Used	10	0	
8704329010	Freezer and refrigerator vehicles	10	0	
8704329020	Tank lorries	10	0	
8704329090	Other	10	0	
8704901010	New	10	0	
8704901020	Used	10	0	
8704909010	Freezer and refrigerator vehicles	10	0	
8704909020	Tank lorries	10	0	
8704909090	Other	10	0	
8705101000	Of telescopic boom type	8	0	
8705102000	Of latticed boom type	8	0	
8705109000	Other	8	0	
8705200000	Mobile drilling derricks	8	0	
8705300000	Fire fighting vehicles	8	0	
8705400000	Concrete-mixer lorries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705901010	Agricultural spraying lorries	8	0	
8705901090	Other	8	0	
8705909010	Breakdown lorries	8	0	
8705909020	Road sweeper lorries	8	0	
8705909030	Mobile workshops	8	0	
8705909040	Mobile broadcast vans	8	0	
8705909050	Mobile clinics	8	0	
8705909060	Telegraphy, radiotelegraphy and radiotelephony transmitting and receiving vans and radar vehicles	8	0	
8705909070	Snow-ploughs and snow-blowers	8	0	
8705909090	Other	8	0	
8706001010	Of those specified in subheading 8701.20 or 8701.90.10	8	0	
8706001090	Other	8	0	
8706002000	For the motor vehicles falling within heading 87.02	8	0	
8706003000	For the motor vehicles falling within heading 87.03	8	0	
8706004000	For the motor vehicles falling within heading 87.04	8	0	
8706005000	For the motor vehicles falling within heading 87.05	8	0	
8707100000	For the vehicles of heading 87.03	8	0	
8707901010	Of those specified in subheading 8701.20 or 8701.90.10	8	0	
8707901090	Other	8	0	
8707902000	For the motor vehicles falling within heading 87.02	8	0	
8707903000	For the motor vehicles falling within heading 87.04	8	0	
8707904000	For the motor vehicles falling within heading 87.05	8	0	
8708100000	Bumpers and parts thereof	8	0	
8708210000	Safety seat belts	8	0	
8708290000	Other	8	0	
8708301000	Mounted brake linings	8	0	
8708302000	Brake booster	8	0	
8708303000	Electronic control brakes	8	0	
8708309000	Other	8	0	
8708400000	Gear boxes and parts thereof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708501000	Drive-axles with differential, whether or not provided with other transmission components and parts thereof	8	0	
8708502000	Non-driving axles and parts thereof	8	0	
8708700000	Road wheels an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8	0	
8708800000	Suspension systems and parts thereof (including shock-absorbers)	8	0	
8708910000	Radiators and parts thereof	8	0	
8708920000	Silencers (mufflers) and exhaust pipes; parts thereof	8	0	
8708930000	Clutches and parts thereof	8	0	
8708940000	Steering wheels, steering columns and steering boxes; parts thereof	8	0	
8708951000	Air bags	8	0	
8708959000	Other	8	0	
8708991010	For the motor vehicles falling within heading 87.01	8	0	
8708991020	For the motor vehicles falling within heading 87.02	8	0	
8708991030	For the motor vehicles falling within heading 87.03	8	0	
8708991040	For the motor vehicles falling within heading 87.04	8	0	
8708991050	For the motor vehicles falling within heading 87.05	8	0	
8708999000	Other	8	0	
8709110000	Electrical	8	0	
8709190000	Other	8	0	
8709900000	Parts	8	0	
8710001000	Tanks	0	0	
8710002000	Other armoured fighting vehicles, motorised	0	0	
8710009000	Parts	0	0	
8711101000	Motor cycles	8	0	
8711102000	Mopeds	8	0	
8711103000	Side-cars	8	0	
8711109000	Other	8	0	
8711201000	Motor cycles	8	0	
8711202000	Side-cars	8	0	
8711209000	Other	8	0	
8711301000	Motor cycles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711302000	Side-cars	8	0	
8711309000	Other	8	0	
8711401000	Motor cycles	8	0	
8711402000	Side-cars	8	0	
8711409000	Other	8	0	
8711501000	Motor cycles	8	0	
8711502000	Side-cars	8	0	
8711509000	Other	8	0	
8711901000	Motor cycles	8	0	
8711902000	Side-cars	8	0	
8711909000	Other	8	0	
8712001000	Racing bicycles	8	0	
8712009010	For transportation of goods	8	0	
8712009020	Tricycles	8	0	
8712009090	Other	8	0	
8713100000	Not mechanically propelled	0	0	
8713900000	Other	0	0	
8714110000	Saddles	8	0	
8714190000	Other	8	0	
8714200000	Of carriages for disabled persons	0	0	
8714911000	Frames	8	0	
8714912000	Forks	8	0	
8714919000	Other parts	8	0	
8714921000	Wheel Rims	8	0	
8714922000	Spokes	8	0	
8714931000	Hubs, other than coaster braking hubs and hub brakes	8	0	
8714932000	Free-wheel sprocket-wheels	8	0	
8714941000	Coaster braking hubs and hub brakes	8	0	
8714942000	Other brakes	8	0	
8714949000	Parts thereof	8	0	
8714950000	Saddles	8	0	
8714961000	Pedals	8	0	
8714962000	Crankgear	8	0	
8714969000	Parts thereof	8	0	
8714990000	Other	8	0	
8715000000	Baby carriages and parts thereof	8	0	
8716100000	Trailers and semi-trailers of the caravan type, for housing or camping	8	0	
8716200000	Self-loading or self-unloading trailers and semi-trailers for agricultural purposes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716310000	Tanker trailers and tanker semi-trailers	8	0	
8716390000	Other	8	0	
8716400000	Other trailers and semi-trailers	8	0	
8716801000	Hand-carts	8	0	
8716802000	Carts drawn by ox or horse	8	0	
8716803000	Sledges	8	0	
8716809000	Other	8	0	
8716901000	Of trailers and semi-trailers	8	0	
8716909000	Other	8	0	
8801001010	Gliders	0	0	
8801001020	Hang gliders	0	0	
8801009010	Balloons and dirigibles	8	3	
8801009090	Other	0	0	
8802111000	For military use	0	0	
8802119000	Other	0	0	
8802121000	For military use	0	0	
8802129000	Other	0	0	
8802201000	Of propeller type	0	0	
8802202000	Of turbo-propeller type	0	0	
8802203000	Of turbo-jet type	0	0	
8802209000	Other	0	0	
8802301000	Of propeller type	0	0	
8802302000	Of turbo-propeller type	0	0	
8802303000	Of turbo-jet type	0	0	
8802309000	Other	0	0	
8802401000	Of propeller type	0	0	
8802402000	Of turbo-propeller type	0	0	
8802403000	Of turbo-jet type	0	0	
8802409000	Other	0	0	
8802601010	Satellites	0	0	
8802601090	Other	0	0	
8802602000	Spacecraft launch vehicles	0	0	
8802603000	Suborbital	0	0	
8803100000	Propellers and rotors and parts thereof	0	0	
8803200000	Under-carriages and parts thereof	0	0	
8803301000	Of aeroplanes	0	0	
8803302000	Of helicopters	0	0	
8803901000	Of gliders and hang gliders	0	0	
8803902000	Spacecraft (including satelliters)	0	0	
8803909000	Other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8804001000	Parachutes (including dirigible parachutes and paragliders)	0	0	
8804002000	Rotochutes	0	0	
8804009010	Of parachutes (including dirigible parachutes and paragliders)	0	0	
8804009020	Of rotochutes	0	0	
8805101010	For military use and police use	0	0	
8805101090	Other	5	0	
8805102010	For military use and police use	0	0	
8805102090	Other	5	0	
8805109010	For military use and police use	0	0	
8805109090	Other	5	0	
8805211010	For military and police use	0	0	
8805211090	Other	5	0	
8805212010	For military and police use	0	0	
8805212090	Other	5	0	
8805291010	For military and police use	0	0	
8805291090	Other	5	0	
8805292010	For military and police use	0	0	
8805292090	Other	5	0	
8901100000	Cruise ships, excursion boats and similar vessels princip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ferry-boats of all kinds	0	0	
8901200000	Tankers	0	0	
8901300000	Refrigerated vessels, other than those of subheading 8901.20	0	0	
8901901000	Vessels for the transport of goods	0	0	
8901902000	Vessels for the transport of both persons and goods	0	0	
8902001010	Steel ships	0	0	
8902001020	FRP ships	0	0	
8902001030	Wooden ships	0	0	
8902001090	Other	0	0	
8902002010	Factory ships and other vessels for processing, preserving fishery products	0	0	
8902002090	Other	0	0	
8903100000	Inflatable	8	0	
8903910000	Sailboats, with or without auxiliary motor	8	0	
8903920000	Motorboats, other than outboard motorboats	8	0	
8903991000	Outboard motorboats	8	0	
8903999000	Other	8	0	
8904001000	Tugs	5	0	
8904002000	Pusher craft	5	0	
8904009000	Other	5	0	
8905100000	Dredgers	5	0	
8905201000	Drilling ships platforms	5	0	
8905202000	Production platforms	5	0	
8905209000	Other	5	0	
8905901000	Light-vessels	5	0	
8905902000	Fire-floats	5	0	
8905903000	Floating cranes	5	0	
8905904000	Generating vessels	5	0	
8905905000	Salvage ships	5	0	
8905906000	Work-shop vessels	5	0	
8905907000	Drilling ships	5	0	
8905908000	Floating docks	5	0	
8905909000	Other	5	0	
8906100000	War ships	0	0	
8906900000	Other	0	0	
8907100000	Inflatable rafts	5	0	
8907901000	Rafts (other than subheading 8907.10)	5	0	
8907902000	Tanks	5	0	
8907903000	Coffer-dams	5	0	
8907904000	Landing-stages	5	0	
8907905000	Buoys	5	0	
8907906000	Beacons	5	0	
8907909000	Other	5	0	
8908001000	Ship, boats and other vessels for breaking up	0	0	
8908009000	Other	0	0	
9001101000	Optical fibres	8	0	
9001102000	Optical fibre bundles	8	0	
9001103000	Optical fibre cables	8	0	
9001200000	Sheets and plates of polarising material	8	0	
9001300000	Contact lenses	8	3	
9001401000	For vision correction	8	3	
9001409000	Other	8	0	
9001501000	For correcting visions	8	0	
9001509000	Other	8	3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9001901000	Prisms	8	3	
9001902000	Mirrors	8	3	
9001903000	Other lenses	8	0	
9001909000	Other	8	0	
9002111000	For photographic cameras	8	0	
9002119010	For movie cameras and VTR(video tape recorder) cameras	8	0	
9002119020	For projectors	8	3	
9002119090	Other	8	0	
9002191000	For microscopes	8	0	
9002192000	For astronomical telescopes	8	3	
9002199000	Other	8	3	
9002201000	For photographic cameras	8	0	
9002209000	Other	8	3	
9002901000	For photographic cameras	8	0	
9002909010	Of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for making semiconductor devices	3	0	
9002909090	Other	8	0	
9003110000	Of plastics	8	0	
9003191000	Made of or combined with precious metals	8	0	
9003199000	Other	8	0	
9003900000	Parts	8	0	
9004101000	Made of or combined with precious metals	8	0	
9004109000	Other	8	0	
9004901010	Made of, or combined with, precious metals	8	0	
9004901090	Other	8	3	
9004909010	Made of, or combined with, precious metals	8	0	
9004909090	Other	8	5	
9005100000	Binoculars	8	3	
9005801000	Monoculars	8	0	
9005802010	Reflecting telescopes	8	0	
9005802020	Astronomical refracting telescopes	8	0	
9005802030	Transit instruments, equatorial or zenith telescopes and altazimuths	8	0	
9005802090	Other	8	0	
9005809000	Other	8	0	
9005900000	Parts and accessories (including mountings)	8	3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9006100000	Cameras of a kind used for preparing printing plates or cylinders	8	0	
9006301000	For subaqueous photography	8	0	
9006302000	Air survey cameras	8	0	
9006303000	For medical or surgical examination of internal organs	8	3	
9006304000	Comparison cameras for forensic and criminological purposes	8	0	
9006401000	Instant polaroid cameras	8	0	
9006402000	Instant sticker cameras	8	0	
9006409000	Other	8	0	
9006511000	Photographic cameras for special use	8	0	
9006519000	Other	8	5	
9006521000	Photographic cameras for special use	8	0	
9006529010	Cameras of a kind used for recording documents on microfilm, microfiche or other microforms	8	3	
9006529090	Other	8	3	
9006531000	Photographic cameras for special use	8	0	
9006539010	Single use/disposable cameras	8	0	
9006539020	Cameras of a kind used for recording documents on microfilm, microfiche or other microforms	8	3	
9006539090	Other	8	0	
9006591000	Photographic cameras for special use	8	0	
9006599010	Cameras of a kind used for recording documents on microfilm, microfiche or other microforms	8	3	
9006599090	Other	8	3	
9006610000	Discharge lamp("electronic") flashlight apparatus	8	0	
9006691000	Flashbulbs, flashcubes and the like	8	3	
9006699000	Other	8	3	
9006910000	For cameras	8	3	
9006990000	Other	8	3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9007110000	For film of less than 16 ㎜ width or for double-8 ㎜ film	8	0	
9007191000	For film of less 30 ㎜ width	8	3	
9007199000	Other	8	3	
9007201000	For film of less than 16 ㎜ width	8	0	
9007209010	For film of less than 20 ㎜ width	8	0	
9007209020	For film of not less than 20 ㎜ width	8	0	
9007910000	For cameras	8	5	
9007920000	For projectors	8	5	
9008100000	Slide projectors	8	0	
9008200000	Microfilm, microfiche or other microform readers, whether or not capable of producing copies	8	0	
9008300000	Other image projectors	8	0	
9008401000	For the preparation of printing plates	8	0	
9008402000	For microfilm	8	0	
9008409000	Other	8	0	
9008900000	Parts and accessories	8	0	
9010101000	For photo-engraving	8	5	
9010102000	For microfilm	8	0	
9010109010	For the purpose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0	0	
9010109090	Other	8	0	
9010501000	Developing apparatus f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0	0	
9010509000	Other	8	0	
9010600000	Projection screens	8	0	
9010901010	Of the apparatus of subheading 9010.50.1000	0	0	
9010901090	Other	0	0	
9010909000	Other	8	3	
9011101000	Fitted with equipment specifically designed for the handling and transport of semiconductor wafers or reticles	0	0	
9011109000	Other	8	3	
9011201010	Fitted with equipment specifically designed for the handling and transport of semiconductor wafers or reticles	0	0	
9011201090	Other	8	0	
9011209000	Other	8	0	
9011801000	Polarising microscopes	8	0	
9011802000	Metallurgical microscopes	8	0	
9011803000	Phase contrast and interference microscopes	8	0	
9011804000	Biological microscopes	8	0	
9011805000	Comparison microscopes	8	0	
9011809000	Other	8	0	
9011901000	Of subheadings 9011.10.1000, 9011.20.1010	0	0	
9011909000	Other	8	3	
9012101010	Electron beam microscopes, fitted with equipment specifically designed for the handling and transport of semiconductor wafers or reticles	0	0	
9012101090	Other	8	0	
9012102000	Diffraction apparatus	8	0	
9012901000	Of subheading 9012.10.1010	0	0	
9012909000	Other	8	0	
9013100000	Telescopic sights for fitting to arms; periscopes; telescopes designed to form parts of machines, appliances, instruments or apparatus of this Chapter or Section XVI	8	0	
9013200000	Lasers, other than laser diodes	8	0	
9013801110	For opto-electronic watches	8	3	
9013801120	For electronic calculators	0	0	
9013801130	For televisions	8	3	
9013801140	For monitor	8	3	
9013801190	Other	8	3	
9013801910	For opto-electronic watches	8	3	
9013801920	For electronic calculators	0	0	
9013801930	For televisions	8	3	
9013801990	Other	8	3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9013802000	Magnifiers, loupes, thread counters	8	0	
9013803000	Door viewers (door eyes)	8	0	
9013809000	Other	8	3	
9013901000	Of subheading 9013.80.1120, 9013.80.1920	0	0	
9013909000	Other	8	0	
9014101010	For aircrafts	8	0	
9014101090	Other	8	0	
9014102010	For aircrafts	8	0	
9014102090	Other	8	0	
9014109000	Other	8	0	
9014200000	Instruments and appliances for aeronautical or space navigation (other than compasses)	8	5	
9014800000	Other instruments and appliances	8	0	
9014901000	For aircrafts	8	0	
9014909000	Other	8	0	
9015100000	Rangefinders	8	0	
9015200000	Theodolites and tachymeters (tacheometers)	8	0	
9015300000	Levels	8	0	
9015400000	Photogrammetrical surveying instruments and appliances	8	0	
9015801000	For use in the field	8	0	
9015802000	For hydrographic use	8	0	
9015803000	For oceanographic use	8	0	
9015804000	For hydrological use	8	0	
9015805000	For meteorological use	8	0	
9015809000	Other	8	0	
9015900000	Parts and accessories	8	3	
9016001000	Direct reading balances	8	0	
9016002000	Electronic balances	8	0	
9016008000	Other	8	0	
9016009000	Parts or accessories	8	0	
9017101000	Plotters	0	0	
9017109000	Other	8	0	
9017201010	Plotters	0	0	
9017201090	Other	8	0	
9017202010	Plotters	0	0	
9017202090	Other	8	0	
9017203000	Mathematical calculating instruments	8	0	
9017209000	Other	8	0	
9017301000	Micrometers	8	0	
9017302000	Dialgauges	8	0	
9017303000	Vernier callipers	8	0	
9017309000	Other	8	5	
9017801000	Divided scales, measuring rod and tapes	8	0	
9017809010	For the purpose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0	0	
9017809090	Other	8	3	
9017901000	For the purpose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0	0	
9017909010	PCA(printed circuit assemblies) of plotters, which consist of one or more printed circuits of heading 85.34	0	0	
9017909020	Flat panel displays for plotters (including LCD, EL(electro luminescence), plasma and other technologies)	0	0	
9017909090	Other	8	0	
9018111000	Electro-cardiographs	8	0	
9018119000	Parts and accessories	8	0	
9018120000	Ultrasonic scanning apparatus	8	0	
9018130000	Magnetic resonance imaging apparatus	8	0	
9018140000	Scintigraphic apparatus	8	0	
9018191000	Electro-encephalographs	8	0	
9018192000	Audiometers and similar apparatus	8	0	
9018194000	Electro-tonographs	8	0	
9018197000	Patient monitoring system	8	0	
9018198000	Other	8	0	
9018199000	Parts and accessories	8	0	
9018201000	Ultra-violet or infra-red ray apparatus	8	3	
9018209000	Parts and accessories	8	0	
9018310000	Syringes, with or without needles	8	0	
9018321000	Needles for injections	8	0	
9018322000	Needles for sutures	8	0	
9018329000	Other	8	5	
9018391000	Blood transfusion set or intravenous set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9018392000	Catheters	8	5	
9018398000	Other	8	0	
9018399000	Parts and accessories	8	3	
9018411000	Dental drill engines	8	0	
9018419000	Parts and accessories	8	0	
9018491000	Dental burs	8	3	
9018492000	Dental units	8	0	
9018493000	Scalers for treating tartar	8	3	
9018498000	Other	8	0	
9018499000	Parts and accessories	8	3	
9018501000	Ophthalmic instruments and appliances	8	3	
9018509000	Parts and accessories	8	5	
9018901000	Pregnancy diagnostic apparatus	8	0	
9018909010	Other ordinary surgical instruments and appliances	8	5	
9018909020	Gynaecological or obstetrical instruments	8	0	
9018909030	Endoscopes (gastroscopes, peritoneoscopes, cystoscopes and the like)	8	0	
9018909040	Artificial kidney apparatus	8	0	
9018909050	Dialyzers for artificial kidney apparatus	8	0	
9018909060	Veterinary instrument and appliances	8	0	
9018909080	Other	8	0	
9018909090	Parts and accessories	8	5	
9019101000	Mechano-therapy appliances	0	0	
9019102000	Massage apparatus	0	0	
9019103000	Psychological aptitude-testing apparatus	0	0	
9019109000	Parts and accessories	0	0	
9019201000	Ozone therapy apparatus	0	0	
9019202000	Oxygen therapy apparatus	0	0	
9019203000	Aerosol therapy apparatus	0	0	
9019204000	Artificial respiration apparatus	0	0	
9019208000	Other	0	0	
9019209000	Parts and accessories	0	0	
9020001000	Gas masks	8	0	
9020008000	Other breathing appliances	8	0	
9020009000	Parts and accessories	8	0	
9021100000	Orthopaedic or fracture appliances	0	0	
9021210000	Artificial teeth	0	0	
9021290000	Other	0	0	
9021310000	Artificial joints	0	0	
9021390000	Other	0	0	
9021400000	Hearing aids, excluding parts and accessories	0	0	
9021500000	Pacemakers for stimulating heart muscles, excluding parts and accessories	0	0	
9021901000	Screws, staples, pins or the like which are inserted inside the human body	0	0	
9021908000	Other	0	0	
9021909000	Parts and accessories	0	0	
9022120000	Computed tomography apparatus	8	0	
9022130000	Other, for dental uses	8	0	
9022141020	Angiography units	8	0	
9022141030	Bone densimeter	8	3	
9022141090	Other	8	0	
9022142000	For veterinary use	8	0	
9022191000	For physical or chemical testing	8	0	
9022192000	For industrial use	8	0	
9022199000	Other	8	0	
9022211010	Gamma cameras	8	0	
9022211020	Linear accelerators	8	0	
9022211030	Cobalt 60 therapy units	8	0	
9022211090	Other	8	0	
9022212000	For veterinary use	8	0	
9022291000	For physical or chemical testing	8	0	
9022292000	For industrial use	8	0	
9022299000	Other	8	0	
9022300000	X-ray tubes	8	0	
9022901010	X-ray generators	8	0	
9022901020	X-ray screens	8	0	
9022901030	X-ray high tension generators	8	0	
9022901090	Other	8	0	
9022909000	Parts and accessories	8	0	
9023001000	Models of human or animal anatomies	8	0	
9023009000	Other	8	0	
9024101000	Hardness testing machines	8	0	
9024102000	Tensile testing machines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9024103000	Compression testing machines	8	0	
9024104000	Fatigue testing machines	8	0	
9024105000	Universal type testing machines	8	0	
9024106000	Machines and appliances for testing adhesive strength or shear force of ball or wire of printed circuits board, semiconductor device and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	8	0	
9024109000	Other	8	0	
9024801010	Testing machines to detect changes in the dimensions of textile	8	0	
9024801020	Abrasion testing machines	8	0	
9024801090	Other	8	0	
9024809010	Elasticity meters	8	0	
9024809020	Plastometers	8	0	
9024809090	Other	8	3	
9024901000	Sensor (devices sensing a specific quantity of change, whether or not combined with equipment which convert measured signal into electrical signal)	8	0	
9024909000	Other	8	0	
9025111000	Clinical or veterinary thermometers	0	0	
9025119000	Other	8	0	
9025191000	Thermometers	8	0	
9025192010	Optical pyrometers	8	0	
9025192090	Other	8	5	
9025801000	Hydrometers and similar floating instruments	8	0	
9025802010	Mercury barometer	8	0	
9025802090	Other	8	0	
9025803010	Psychrometers	8	0	
9025803020	Hair hygrometers	8	0	
9025803090	Other	8	0	
9025809000	Other	8	3	
9025901100	Temperature sensor	8	0	
9025901200	Humidity sensor	8	0	
9025901900	Other sensor	8	0	
9025909000	Other	8	0	
9026101000	Flow meters	0	0	
9026102000	Level gauges	0	0	
9026109000	Other	0	0	
9026201110	Liquid type	0	0	
9026201120	Metallic type	0	0	
9026201190	Other	0	0	
9026201900	Other	0	0	
9026209000	Other	0	0	
9026801000	Heat meters	0	0	
9026802000	Anemometers	0	0	
9026809000	Other	0	0	
9026901100	Level sensor	0	0	
9026901200	Flow mass or speed sensor	0	0	
9026901300	Pressure sensor	0	0	
9026901400	Thermal sensor, other than temperature sensor and calorie sensor	0	0	
9026901900	Other sensor	0	0	
9026909000	Other	0	0	
9027100000	Gas or smoke analysis apparatus	8	3	
9027200000	Chromatographs and electrophoresis instruments	0	0	
9027301000	Spectrometers	0	0	
9027302000	Spectrophotometers	0	0	
9027303000	Spectrograph	0	0	
9027501000	Polarimeters	0	0	
9027502000	Refractometers	0	0	
9027503000	Colorimeters	0	0	
9027504000	Luxmeters	0	0	
9027509000	Other	0	0	
9027801000	For physical or chemical analysis	0	0	
9027802010	pH meters	0	0	
9027802020	Calori meters	0	0	
9027802030	Visco meters	0	0	
9027802040	Expansion meters	0	0	
9027802050	Exposure meters	8	0	
9027802090	Other	0	0	
9027901000	Microtomes	8	0	
9027909110	Gas sensor	8	0	
9027909121	Of particulate	0	0	
9027909122	Of smoke	8	0	
9027909130	Calorie sensor	0	0	
9027909190	Other	0	0	
9027909910	For the purpose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9027909991	For gas or smoke analysis apparatus and microtomes	8	3	
9027909999	Other	0	0	
9028101010	Of digital type	8	0	
9028101090	Other	8	3	
9028102000	Calibrating meters	8	0	
9028201010	Of digital type	8	0	
9028201090	Other	8	0	
9028202000	Calibrating meters	8	0	
9028301010	Not less than 50 A	8	0	
9028301020	Less than 50 A	8	0	
9028302000	Calibrating meters	8	3	
9028900000	Parts and accessories	8	0	
9029101000	Revolution counters	8	0	
9029102000	Production counters	8	0	
9029103000	Taximeters	8	0	
9029104000	Mileometers	8	0	
9029105000	Counters for indicating the working hours of machines	8	0	
9029109000	Other	8	0	
9029201010	Chronometric system	8	0	
9029201090	Other	8	0	
9029202000	Stroboscopes	8	0	
9029901100	Speed sensor	8	0	
9029901200	Rotation sensor	8	0	
9029901900	Other sensor	8	0	
9029909000	Other	8	0	
9030100000	Instruments and apparatus for measuring or detecting ionising radiations	0	0	
9030201010	Of cathode-ray	8	0	
9030201090	Other	8	0	
9030202010	Of cathode-ray	8	0	
9030202090	Other	8	0	
9030310000	Multimeters without a recording device	8	0	
9030320000	Multimeters with a recording device	8	0	
9030331000	Voltmeters	8	0	
9030332000	Ammeters	8	0	
9030333000	Circuit testers	8	0	
9030334000	Resistance meters	8	0	
9030335000	Galvanometer	8	0	
9030336000	Frequency measuring apparatus	8	0	
9030339000	Other	8	0	
9030391000	Voltmeters	8	0	
9030392000	Ammeters	8	0	
9030393000	Circuit testers	8	0	
9030394000	Resistance meters	8	0	
9030395000	Galvanometer	8	0	
9030396000	Frequency measuring apparatus	8	0	
9030399000	Other	8	0	
9030401000	Crosstalk meter	0	0	
9030402000	Gain measuring instruments	0	0	
9030403000	Distortion factor meters	0	0	
9030404000	Psophometers	0	0	
9030409000	Other	0	0	
9030820000	For measuring or checking semiconductor wafers or devices	0	0	
9030840000	Other, with a recording device	8	0	
9030890000	Other	8	3	
9030901100	Electromagnetic sensor	8	0	
9030901200	Radiation ray sensor	8	0	
9030901900	Other sensor	8	0	
9030909010	Of subheading 9030.82 (including sensors of subheading 9030.90)	0	0	
9030909090	Other	8	0	
9031100000	Machines for balancing mechanical parts	8	0	
9031200000	Test benches	8	0	
9031411000	Focimeters	0	0	
9031419000	Other	0	0	
9031491000	Optical surface testers	8	0	
9031492000	Optical goniometers or angle gauges	8	0	
9031493000	Focimeters	8	0	
9031494010	For the purpose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0	0	
9031494090	Other	8	0	
9031499010	For measuring surface particulate contamination on semiconductor wafers	0	0	
9031499090	Other	8	3	
9031801000	Ultrasonic fish finders	8	0	
9031802000	Load-cells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9031809010	Equipment for testing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s	8	0	
9031809020	Gear testing machines	8	0	
9031809030	Planimeters	8	0	
9031809040	Spherometers	8	0	
9031809050	Apparatus for checking textile materials	8	0	
9031809060	Ultra-sonic thickness measuring instruments	8	0	
9031809070	Instruments for detecting faults, cracks or other defects	8	3	
9031809080	Dynamometers	8	0	
9031809091	For the purpose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0	0	
9031809099	Other	8	0	
9031901111	Of subheadings 9031.41, 9031.49.9010	0	0	
9031901119	Of other	0	0	
9031901190	Other	8	0	
9031901291	Of subheadings 9031.41, 9031.49.9010	0	0	
9031901292	Of othe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0	0	
9031901299	Other	8	0	
9031901911	Of subheadings 9031.41, 9031.49.9010	0	0	
9031901919	Of other	0	0	
9031901990	Other	8	0	
9031909011	Of subheadings 9031.41, 9031.49.9010	0	0	
9031909019	Of other	0	0	
9031909090	Other	8	0	
9032101010	For refrigerators	8	0	
9032101020	For aircraft	5	0	
9032101090	Other	8	0	
9032102000	Of fixed type	8	0	
9032200000	Manostats	8	0	
9032811010	For aircraft	5	0	
9032811090	Other	8	0	
9032812010	For aircraft	5	0	
9032812091	Of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for making semiconductor devices	3	0	
9032812099	Other	8	0	
9032819010	For aircraft	5	0	
9032819090	Other	8	0	
9032891010	For aircraft	5	0	
9032891090	Other	8	0	
9032892010	For aircraft	5	0	
9032892090	Other	8	0	
9032893010	For aircraft	5	0	
9032893090	Other	8	0	
9032899010	For aircraft	5	0	
9032899090	Other	8	0	
9032901000	For aircraft	5	0	
9032909000	Other	8	0	
9033000000	Parts and accessorie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for machines, appliances, instruments or apparatus of Chapter 90	8	0	
9101110000	With mechanical display only	8	0	
9101191000	With opto-electronic display only	8	0	
9101199000	Other	8	5	
9101210000	With automatic winding	8	0	
9101290000	Other	8	0	
9101910000	Electrically operated	8	0	
9101990000	Other	8	3	
9102111000	For the blind	8	0	
9102112000	With dials, bands or similar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8	0	
9102119010	Battery or accumulator operated	8	0	
9102119090	Other	8	0	
9102121000	Battery or accumulator operated	8	0	
9102129010	For the blind	8	0	
9102129020	With dials, bands or similar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8	0	
9102129090	Other	8	0	
9102191000	Battery or accumulator operated	8	0	
9102199010	For the blind	8	0	
9102199020	With dials, bands or similar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8	0	
9102199090	Other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9102211000	For the blind	8	0	
9102212000	With dials, bands or similar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8	0	
9102219000	Other	8	0	
9102291000	For the blind	8	0	
9102292000	With dials, bands or similar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8	0	
9102299000	Other	8	0	
9102911000	Stop-watches	8	0	
9102912000	For the blind	8	0	
9102919010	Battery or accumulator powered	8	0	
9102919090	Other	8	0	
9102991000	Stop-watches	8	0	
9102992000	For the blind	8	0	
9102999000	Other	8	0	
9103101000	Travel clocks	8	0	
9103109000	Other	8	0	
9103901000	Travel clocks	8	0	
9103909000	Other	8	0	
9104001000	For vehicles	8	3	
9104002000	For aircraft	8	0	
9104004000	For vessels	8	0	
9104009000	Other	8	0	
9105110000	Electrically operated	8	0	
9105190000	Other	8	0	
9105210000	Electrically operated	8	0	
9105290000	Other	8	0	
9105910000	Electrically operated	8	0	
9105990000	Other	8	0	
9106100000	Time-registers; time-recorders	8	0	
9106901000	Watchmen's telltales	8	0	
9106902000	Timers	8	0	
9106903000	Parking meters	8	0	
9106909000	Other	8	0	
9107001000	With synchronous motor	8	0	
9107009000	Other	8	0	
9108110000	With mechanical display only or with a device to which a mechanical display can be incorporated	5	0	
9108120000	With opto-electronic display only	5	0	
9108190000	Other	5	0	
9108200000	With automatic winding	5	0	
9108900000	Other	5	0	
9109110000	Of alarm clocks	8	0	
9109190000	Other	8	0	
9109900000	Other	8	0	
9110111000	Battery or accumulator powered	8	0	
9110112000	With automatic winding	8	0	
9110119000	Other	8	0	
9110121000	Battery or accumulator powered	8	0	
9110122000	With automatic winding	8	0	
9110129000	Other	8	0	
9110191000	Battery or accumulator powered	8	0	
9110192000	With automatic winding	8	0	
9110199000	Other	8	0	
9110901000	Battery or accumulator powered	8	0	
9110909000	Other	8	0	
9111100000	Cases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8	0	
9111200000	Cases of base metal, whether or not gold- or silver- plated	8	0	
9111800000	Other cases	8	0	
9111901000	Of precious metal or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8	0	
9111909000	Other	8	0	
9112200000	Cases	8	0	
9112900000	Parts	8	0	
9113100000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8	0	
9113200000	Of base metal, whether or not gold or silver plated	8	0	
9113901000	Of plastics	8	0	
9113902000	Of leather or composition leather	8	0	
9113909000	Other	8	0	
9114100000	Springs, including hair-springs	8	0	
9114200000	Jewels	8	0	
9114300000	Dials	8	0	
9114400000	Plates and bridges	8	0	
9114900000	Other	8	0	
9201101000	Of automatic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9201109000	Other	8	0	
9201200000	Grand pianos	8	0	
9201901000	Harpsichords	8	0	
9201909000	Other	8	0	
9202101000	Violins	8	0	
9202102000	Violoncellos	8	0	
9202109000	Other	8	0	
9202901000	Guitars	8	0	
9202902000	Harps	8	0	
9202903000	Mandolines	8	0	
9202904000	Banjo	8	0	
9202909000	Other	8	0	
9205101000	Trumpets	8	0	
9205102000	Trombones	8	0	
9205109000	Other	8	0	
9205901010	Flutes	8	0	
9205901020	Clarinets	8	0	
9205901030	Saxophones	8	0	
9205901040	Recorder	8	0	
9205901090	Other	8	0	
9205902010	Pipe organs	8	0	
9205902020	Reed organs	8	0	
9205902090	Other	8	0	
9205903010	Accordions	8	0	
9205903020	Melodicas	8	0	
9205903090	Other	8	0	
9205904000	Mouth organs	8	0	
9205909000	Other	8	0	
9206001000	Drums	8	0	
9206002000	Xylophones	8	0	
9206003000	Cymbals	8	0	
9206004000	Castanets	8	0	
9206005000	Maracas	8	0	
9206006000	Tambourine	8	0	
9206009000	Other	8	0	
9207101000	Organs (including synthesizers)	8	0	
9207103000	Pianos	8	0	
9207109000	Other	8	0	
9207901000	Guitars	8	0	
9207902000	Accordions	8	0	
9207903000	Rhythm box	8	0	
9207909000	Other	8	0	
9208100000	Musical boxes	8	0	
9208901000	Fairground organs	8	0	
9208902000	Mechanical street organs	8	0	
9208903000	Mechanical singing birds	8	0	
9208904000	Musical saws	8	0	
9208909000	Other	8	0	
9209301000	Of metal wire	8	0	
9209309000	Other	8	0	
9209910000	Parts and accessories for pianos	8	0	
9209920000	Parts and accessories for the musical instruments of heading 92.02	8	0	
9209940000	Parts and accessories for the musical instruments of heading 92.07	8	0	
9209991000	For musical movements	8	0	
9209992000	Metronomes, tuning forks and pitch pipes of all kinds	8	0	
9209993000	Mechanisms for musical boxes	8	0	
9209999000	Other	8	3	
9301110000	Self-propelled	0	0	
9301190000	Other	0	0	
9301200000	Rocket launchers; flame-throwers; grenade launchers; torpedo tubes and similar projectors	0	0	
9301901000	Fully automatic shotguns	0	0	
9301902010	Bolt action	0	0	
9301902020	Semi-automatic	0	0	
9301902030	Fully automatic	0	0	
9301902090	Other	0	0	
9301903000	Machine-guns	0	0	
9301904010	Fully automatic pistols	0	0	
9301904090	Other	0	0	
9301909000	Other	0	0	
9302001010	Revolvers	0	0	
9302001021	Semi-automatic	0	0	
9302001029	Other	0	0	
9302001030	Pistols, multiple barrel	0	0	
9302001090	Other	0	0	
9302009010	Revolvers	0	0	
9302009021	Semi-automatic	0	0	
9302009029	Other	0	0	
9302009030	Pistols, multiple barrel	0	0	
9302009090	Other	0	0	
9303100000	Muzzle-loading firearms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9303201011	Pump-action	8	0	
9303201012	Semi-automatic	8	0	
9303201019	Other	8	0	
9303201020	Shotguns, multiple barrel, including combination guns	8	0	
9303201090	Other	8	0	
9303209011	Pump-action	8	0	
9303209012	Semi-automatic	8	0	
9303209019	Other	8	0	
9303209020	Shotguns, multiple barrel, including combination guns	8	0	
9303209090	Other	8	0	
9303301010	Single-shot	8	0	
9303301020	Semi-automatic	8	0	
9303301090	Other	8	0	
9303309010	Single-shot	8	0	
9303309020	Semi-automatic	8	0	
9303309090	Other	8	0	
9303900000	Other	8	0	
9304001000	Air guns	8	0	
9304009000	Other	8	0	
9305101010	Firing mechanisms	0	0	
9305101020	Frames and receivers	0	0	
9305101030	Barrels	0	0	
9305101040	Pistons, locking lugs and gas buffers	0	0	
9305101050	Magazines and parts thereof	0	0	
9305101060	Silencers (sound moderators) and parts thereof	0	0	
9305101070	Butts, grips and plates	0	0	
9305101080	Slides (for pistols) and cylinders (for revolvers)	0	0	
9305101090	Other	0	0	
9305109010	Firing mechanisms	8	0	
9305109020	Frames and receivers	8	0	
9305109030	Barrels	8	0	
9305109040	Pistons, locking lugs and gas buffers	8	0	
9305109050	Magazines and parts thereof	8	0	
9305109060	Silencers (sound moderators) and parts thereof	8	0	
9305109070	Butts, grips and plates	8	0	
9305109080	Slides(for pistols) and cylinders (for revolvers)	8	0	
9305109090	Other	8	0	
9305210000	Shotgun barrels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9305291000	Firing mechanisms	8	0	
9305292000	Frames and receivers	8	0	
9305293000	Rifle barrels	8	0	
9305294000	Pistons, locking lugs and gas buffers	8	0	
9305295000	Magazines and parts thereof	8	0	
9305296000	Silencers (sound moderators) and parts thereof	8	0	
9305297000	Flash eliminators and parts thereof	8	0	
9305298000	Breeches, bolts (gunlocks) and bolt carriers	8	0	
9305299000	Other	8	0	
9305911010	Firing mechanisms	0	0	
9305911020	Frames and receivers	0	0	
9305911030	Barrels	0	0	
9305911040	Pistons, locking lugs and gas buffers	0	0	
9305911050	Magazines and parts thereof	0	0	
9305911060	Silencers (sound moderators) and parts thereof	0	0	
9305911070	Flash eliminators and parts thereof	0	0	
9305911080	Breeches, bolts (gunlocks) and bolt carriers	0	0	
9305911090	Other	0	0	
9305919000	Other	0	0	
9305990000	Other	8	0	
9306210000	Cartridges	0	0	
9306290000	Other	0	0	
9306301000	Cartridges for riveting or similar tools or for captive-bolt humane killers and parts thereof	0	0	
9306309000	Other	0	0	
9306900000	Other	0	0	
9307000000	Swords, cutlasses, bayonets, lances and similar arms and parts thereof and scabbards and sheaths therefor	0	0	
9401100000	Seats of a kind used for aircraft	0	0	
9401200000	Seats of a kind used for motor vehicles	8	0	
9401302000	Of cane	0	0	
9401303000	Covered with leather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9401309000	Other	0	0	
9401401000	Of cane	0	0	
9401402000	Covered with leather	0	0	
9401409000	Other	0	0	
9401510000	Of bamboo or rattan	0	0	
9401591000	Of cane	0	0	
9401599000	Other	0	0	
9401611000	Covered with leather	0	0	
9401619000	Other	0	0	
9401691000	Covered with leather	0	0	
9401699000	Other	0	0	
9401711000	Covered with leather	0	0	
9401719000	Other	0	0	
9401791000	Covered with leather	0	0	
9401799000	Other	0	0	
9401801000	Of stone	0	0	
9401809000	Other	0	0	
9401901000	Of wood	8	0	
9401902000	Of metal	8	0	
9401909000	Other	8	0	
9402101010	Dentists' chairs	0	0	
9402101020	Optical chairs	0	0	
9402101090	Other	0	0	
9402109010	Barbers or beauty shop's chairs	0	0	
9402109090	Other	0	0	
9402901000	Operating tables	0	0	
9402902000	Gynecologic tables	0	0	
9402903000	Delivery tables	0	0	
9402908000	Other	0	0	
9402909000	Parts	0	0	
9403100000	Metal furniture of a kind used in offices	0	0	
9403201000	Beds	0	0	
9403209000	Other	0	0	
9403301000	Desks	0	0	
9403309000	Other	0	0	
9403401000	Dinner tables	8	0	
9403409000	Other	8	0	
9403501000	Beds	0	0	
9403509000	Other	0	0	
9403601010	Stationery chests	0	0	
9403601020	Dressing tables	0	0	
9403601030	Dressers (wardrobes)	0	0	
9403601090	Other	0	0	
9403609010	Stationery chests	0	0	
9403609020	Dressing tables	0	0	
9403609030	Dressers (wardrobes)	0	0	
9403609090	Other	0	0	
9403701000	Baby's step training	0	0	
9403709000	Other	0	0	
9403810000	Of bamboo or rattan	0	0	
9403890000	Other	0	0	
9403900000	Parts	8	0	
9404100000	Mattress supports	8	3	
9404210000	Of cellular rubber or plastics, whether or not covered	8	0	
9404290000	Of other materials	8	0	
9404300000	Sleeping bags	8	0	
9404900000	Other	8	3	
9405101000	Of filament lamps	8	0	
9405102000	Of fluorescent lamps	8	0	
9405109000	Other	8	0	
9405201000	Of filament lamps	8	0	
9405202000	Of fluorescent lamps	8	0	
9405209000	Other	8	5	
9405301000	Of filament lamps	8	0	
9405309000	Other	8	0	
9405401000	Of anti-explosive type	8	0	
9405402000	Of flood type	8	0	
9405403000	Of street type	8	0	
9405409000	Other	8	0	
9405500000	Non-electrical lamps and lighting fittings	8	0	
9405601000	Of neon tubes	8	0	
9405602000	Of filament lamps	8	3	
9405603000	Of fluorescent lamps	8	0	
9405609000	Other	8	0	
9405911000	Of chandeliers	8	0	
9405919000	Other	8	0	
9405921000	Of chandeliers	8	0	
9405929000	Other	8	0	
9405991000	Of chandeliers	8	0	
9405999000	Other	8	0	
9406001000	Of wood	8	12	
9406009010	Of plastic	8	3	
9406009020	Of iron or steel	8	0	
9406009030	Of aluminium	8	0	
9406009090	Other	8	0	
9503001100	Children's tricycles	0	0	
9503001200	Scooters	0	0	
9503001300	Pedal cars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9503001400	Dolls' carriages	0	0	
9503001800	Other	0	0	
9503001900	Parts and accessories	0	0	
9503002110	Of textiles	8	0	
9503002120	Of rubbers	0	0	
9503002130	Of plastics	8	0	
9503002140	Of ceramics	0	0	
9503002150	Of glasses	0	0	
9503002160	Of wood	0	0	
9503002190	Other	8	0	
9503002910	Garments and accessories therefor, footwear and headgear	8	0	
9503002990	Other	0	0	
9503003110	Electric trains	0	0	
9503003190	Accessories	0	0	
9503003200	Reduced-size ("scale") model assembly kits, whether or not working models, excluding those of subheading 9503.00.31	0	0	
9503003300	Other construction sets and constructional toys	0	0	
9503003411	Of textile materials	8	0	
9503003419	Other	8	0	
9503003491	Of textile material	8	0	
9503003492	Of rubbers	0	0	
9503003493	Of plastics	8	0	
9503003494	Of metal	8	0	
9503003495	Of ceramics	0	0	
9503003496	Of glasses	0	0	
9503003497	Of wood	0	0	
9503003499	Other	8	0	
9503003500	Toy musical instruments and apparatus	8	0	
9503003600	Puzzles	0	0	
9503003700	Other toys, put up in sets or outfits	8	0	
9503003800	Other toys and models, incorporating a motor	8	0	
9503003911	Balloons, toy balls, kites and the like	8	0	
9503003919	Other	8	0	
9503003990	Parts and accessories (excluding those of subheading 9503.00.3190)	0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9504100000	Video games of a kind used with a television receiver	0	0	
9504201000	Billiard tables	0	0	
9504202000	Billiard balls	0	0	
9504209000	Other	0	0	
9504300000	Other games, operated by coins, banknotes, bank cards, tokens or by other means of payment, other than bowling alley equipment	0	0	
9504400000	Playing cards	0	0	
9504901010	Pin tables	0	0	
9504901020	Pin setters	0	0	
9504901030	Bowling balls	0	0	
9504901040	Lane	0	0	
9504901050	Bowling pins	0	0	
9504901090	Other	0	0	
9504902000	Electronic games	0	0	
9504903000	Other articles and equipment	0	0	
9504909010	Of video games	0	0	
9504909020	Of electronic games	0	0	
9504909090	Other	0	0	
9505100000	Articles for Christmas festivities	8	0	
9505900000	Other	8	3	
9506110000	Skis	8	0	
9506120000	Ski-fastenings (ski-bindings)	8	0	
9506190000	Other	8	3	
9506210000	Sailboards	8	0	
9506290000	Other	8	0	
9506310000	Clubs, complete	8	0	
9506320000	Balls	8	0	
9506391000	Parts of clubs	8	3	
9506399000	Other	8	0	
9506401000	Table-tennis tables	8	0	
9506402000	Table-tennis rackets	8	0	
9506403000	Table-tennis balls	8	0	
9506409000	Other	8	0	
9506510000	Lawn-tennis rackets, whether or not strung	8	0	
9506591000	Badminton rackets	8	0	
9506599000	Other	8	0	
9506610000	Lawn-tennis balls	8	0	
9506621000	Soccer balls	8	0	
9506622000	Basket balls	8	0	
9506623000	Volley balls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9506624000	Hand balls	8	0	
9506625000	American footballs	8	0	
9506629000	Other	8	0	
9506691000	Badminton shuttlecock	8	0	
9506692000	Baseballs	8	0	
9506699000	Other	8	0	
9506700000	Ice skates and roller skates, including skating boots with skates attached	8	0	
9506910000	Articles and equipment for general physical exercise, gymnastics or athletics	8	0	
9506990000	Other	8	0	
9507101000	Of glass fibre	8	0	
9507102000	Of carbon	8	0	
9507109000	Other	8	0	
9507200000	Fish-hooks, whether or not snelled	8	0	
9507300000	Fishing reels	8	0	
9507901000	Fish landing nets and other fishing tackles	8	0	
9507909000	Other	8	0	
9508100000	Travelling circuses and travelling menageries	8	0	
9508900000	Other	8	0	
9601100000	Worked ivory and articles of ivory	8	0	
9601901010	A nucleus for cultivating pearl	0	0	
9601901090	Other	8	0	
9601902000	Of horn	8	0	
9601903000	Of bone	8	0	
9601904000	Of coral	8	0	
9601909010	A nucleus for cultivating pearl	0	0	
9601909090	Other	8	0	
9602001000	Gelatin capsules	8	0	
9602009010	Worked vegetable carving material (for example, corozo) and articles of vegetable carving material	8	0	
9602009020	Worked jet (and mineral substitutes for jet), amber, meerschaum, agglomerated amber and agglomerated meerschaum, and articles of those substances	8	0	
9602009090	Other	8	0	
9603100000	Brooms and brushes, consisting of twigs or other vegetable materials bound together, with or without handles	8	0	
9603210000	Tooth brushes, including dental-plate brushes	8	0	
9603290000	Other	8	0	
9603300000	Artists' brushes, writing brushes and similar brushes for the application of cosmetics	8	0	
9603400000	Paint, distemper, varnish or similar brushes (other than brushes of subheading 9603.30); paint pads and rollers	8	0	
9603500000	Other brushes constituting parts of machines, appliances or vehicles	8	0	
9603900000	Other	8	0	
9604000000	Hand sieves and hand riddles	8	0	
9605000000	Travel sets for personal toilet, sewing or shoe or clothes cleaning	8	0	
9606100000	Press-fasteners, snap-fasteners and press-studs and parts therefor	8	0	
9606210000	Of plastics, not covered with textile material	8	0	
9606220000	Of base metal, not covered with textile material	8	0	
9606291000	Of shell-fish shell	8	0	
9606299000	Other	8	0	
9606300000	Button moulds and other parts of buttons; button blanks	8	0	
9607110000	Fitted with chain scoops of base metal	8	0	
9607191000	Of plastic	8	0	
9607199000	Other	8	0	
9607201000	Of base metal	8	0	
9607202000	Of plastic	8	0	
9607209000	Other	8	0	
9608100000	Ball point pens	8	0	
9608200000	Felt tipped and other porous-tipped pens and markers	8	0	
9608310000	Indian ink drawing pens	8	0	
9608391000	Fountainpens	8	0	
9608399000	Other	8	0	
9608401000	Propelling pencils	8	0	
9608402010	Of mechanical type	8	0	
9608402090	Other	8	0	
9608500000	Sets of articles from two or more of the foregoing subheadings	8	0	

HSK 2010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Safeguard
9608600000	Refills for ball point pens, comprising the ball point and ink-reservoir	8	0	
9608911000	Pen nibs	8	0	
9608912000	Nib points	8	0	
9608991000	Parts	8	0	
9608999000	Other	8	0	
9609101000	Pencils	8	0	
9609102000	Color pencils	8	0	
9609103000	Crayons	8	0	
9609200000	Pencil leads, black or coloured	8	0	
9609901000	Crayons and oil pastels	8	0	
9609902000	Pastels	8	0	
9609903010	For writing	8	0	
9609903090	Other	8	0	
9609909000	Other	8	0	
9610001000	Slates	8	0	
9610002000	Black boards	8	0	
9610009000	Other	8	0	
9611001000	Stamps	8	0	
9611002000	Hand printing sets	8	0	
9611009000	Other	8	0	
9612101000	For typewriter	8	0	
9612102000	For EDPS machines	8	0	
9612109000	Other	8	0	
9612200000	Ink-pads	8	0	
9613100000	Pocket lighters, gas fuelled, non-refillable	8	0	
9613200000	Pocket lighters, gas fuelled, refillable	8	0	
9613800000	Other lighters	8	0	
9613901000	Piezo-electric ignition units	8	0	
9613909000	Other	8	0	
9614001000	Pipes and pipe bowls	8	0	
9614009000	Other	8	0	
9615111000	Combs	8	0	
9615119000	Other	8	0	
9615191000	Combs	8	0	
9615199000	Other	8	0	
9615901000	Hair-pins	8	0	
9615909000	Other	8	0	
9616100000	Scent sprays and similar toilet sprays, and mounts and heads therefor	8	0	
9616200000	Powder-puffs and pads for the application of cosmetics or toilet preparations	8	0	
9617001000	Vacuum flasks	8	0	
9617002000	Vacuum lunch-boxes	8	0	
9617008000	Other	8	0	
9617009000	Parts	8	0	
9618001000	Tailors' dummies	8	0	
9618002000	Automata	8	0	
9618009000	Other	8	0	
9701101000	Paintings	0	0	
9701102000	Drawings	0	0	
9701103000	Pastels	0	0	
9701900000	Other	0	0	
9702001000	Engravings	0	0	
9702002000	Prints	0	0	
9702003000	Lithographs	0	0	
9703001000	Sculptures	0	0	
9703002000	Statuary	0	0	
9704001000	Postage stamps	0	0	
9704009000	Other	0	0	
9705000000	Collections and collectors' pieces of zoological, botanical, mineralogical, anatomical, historical, archaeological, palaeontological, ethnographic or numismatic interest	0	0	
9706001000	Ceramics	0	0	
9706002000	Musical instruments	0	0	
9706009000	Other	0	0	

1) Originating Goods entered from AUS in tariff item 0701.90.0000 shall be remov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taging category E, except Potatoes for chipping, fresh or chilled which shall be remov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taging category S-1.

2) Originating Goods entered from AUS in tariff item 2103.90.9030 shall be remov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taging category 5, except Mixed seasonings, with over 20% of red pepper, garlic, onion, or ginger each, or over 40% of red pepper, garlic, onion and ginger combined which shall be remov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taging category 15.

Section B: Tariff Schedule of Australia

1. Relation to the *Australian Customs Tariff Act 1995*. The items set forth in Section B of this Annex are generally expressed in terms of the corresponding items in Schedule 3 to the *Australian Customs Tariff Act 1995* (Tariff Act)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items in Section B of this Annex, including the product coverage of subheadings in Section B of this Annex, shall be governed by the Tariff Act. To the extent that the items set forth in Section B of this Annex are identical to the corresponding items in Schedule 3 of the Tariff Act the items in Section B of this Annex shall have the same meaning as the corresponding items in the Tariff Act.

2. Base Rates of Customs Duty. The base rates of customs duty set out in this schedule reflect the Australian most-favoured-nation rates of duty in effect on 1 January 2010.

3. Staging. The following staging categories apply to the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by Australia pursuant to Article 2.3:

(a) category "0" – customs duties on originating goods provided for in the items in staging category "0" shall be eliminated entirely and such goods shall be free of customs duty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b) category "3" – customs duties on goods in category 3 shall be reduced to 3.3 per cent on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shall then be reduced to 1.7 per cent on 1 January of year two, and such goods shall be free of customs duty, effective 1 January of year three;

(c) category "3A" – the *ad valorem* component of compound customs duties on goods in category 3A shall be reduced to 3.3 per cent on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shall then be reduced to 1.7 per cent on 1 January of year two. The specific component of compound customs duties on goods in category 3A shall be reduced to A$8,000 on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shall then be reduced to A$4,000 on 1 January of year two. Such goods shall be free of customs duty, effective 1 January of year three;

(d) category "5" – customs duties on goods in category 5 shall be reduced to 4 per cent on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shall then be removed in four equal annual stages beginning on 1 January of year two, and such goods shall be free of customs duty, effective 1 January of year five;

(e) category "8A" – customs duties on goods in category 8A shall be removed in five equal annual stages beginning on 1 January of year four, and such goods shall be free of customs duty, effective 1 January of year eight;

4. The base rate of customs duty and staging category for an item are indicated for the item in Australia's Schedule.

5. Interim staged rates shall be rounded down, at least to the nearest tenth of a percentage point or, if the rate of duty is expressed in monetary units, at least to the nearest Australian dollar.

6. For the purposes of this Schedule, **year one** means the year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7. For the purposes of this Schedule, beginning in year two, each annual stage of tariff reduction shall take effect on 1 January of the relevant year.

Kore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Schedule of Tariff Commitments: Australia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01	LIVE ANIMALS		
0101	LIVE HORSES, ASSES, MULES AND HINNIES:		
0101.2	-Horses:		
0101.21.00	--Pure-bred breeding animals	0%	0
0101.29.00	--Other	0%	0
0101.30.00	-Asses	0%	0
0101.90.00	-Other	0%	0
0102	LIVE BOVINE ANIMALS:		
0102.2	-Cattle:		
0102.21.00	--Pure-bred breeding animals	0%	0
0102.29.00	--Other	0%	0
0102.3	-Buffalo:		
0102.31.00	--Pure-bred breeding animals	0%	0
0102.39.00	--Other	0%	0
0102.90.00	-Other	0%	0
0103	LIVE SWINE:		
0103.10.00	-Pure-bred breeding animals	0%	0
0103.9	-Other:		
0103.91.00	--Weighing less than 50 kg	0%	0
0103.92.00	--Weighing 50 kg or more	0%	0
0104	LIVE SHEEP AND GOATS:		
0104.10.00	-Sheep	0%	0
0104.20.00	-Goats	0%	0
0105	LIVE POULTRY, THAT IS TO SAY, FOWLS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DUCKS, GEESE, TURKEYS AND GUINEA FOWLS:		
0105.1	-Weighing not more than 185 g:		
0105.11.00	--Fowls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0%	0
0105.12.00	--Turkeys	0%	0
0105.13.00	--Ducks	0%	0
0105.14.00	--Geese	0%	0
0105.15.00	--Guinea fowls	0%	0
0105.9	-Other:		
0105.94.00	--Fowls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0%	0
0105.99.00	--Other	0%	0
0106	OTHER LIVE ANIMALS:		
0106.1	-Mammals:		
0106.11.00	--Primates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0106.12.00	--Whales, dolphins and porpoises (mammals of the order Cetacea); manatees and dugongs (mammals of the order Sirenia)	0%	0
0106.13.00	--Camels and other camelids (Camelidae)	0%	0
0106.14.00	--Rabbits and hares	0%	0
0106.19.00	--Other	0%	0
0106.20.00	-Reptiles (Including snakes and turtles)	0%	0
0106.3	-Birds:		
0106.31.00	--Birds of prey	0%	0
0106.32.00	--Psittaciformes (including parrots, parakeets, macaws and cockatoos)	0%	0
0106.33.00	--Ostriches; emus (Dromaius novaehollandiae)	0%	0
0106.39.00	--Other	0%	0
0106.4	-Insects:		
0106.41.00	--Bees	0%	0
0106.49.00	--Other	0%	0
0106.90.00	-Other	0%	0
02	MEAT AND EDIBLE MEAT OFFAL		
0201	MEAT OF BOVINE ANIMALS, FRESH OR CHILLED:		
0201.10.00	-Carcasses and half-carcasses	0%	0
0201.20.00	-Other cuts with bone in	0%	0
0201.30.00	-Boneless	0%	0
0202	MEAT OF BOVINE ANIMALS, FROZEN:		
0202.10.00	-Carcasses and half-carcasses	0%	0
0202.20.00	-Other cuts with bone in	0%	0
0202.30.00	-Boneless	0%	0
0203	MEAT OF SWINE, FRESH, CHILLED OR FROZEN:		
0203.1	-Fresh or chilled:		
0203.11.00	--Carcasses and half-carcasses	0%	0
0203.12.00	--Hams, shoulders and cuts thereof, with bone in	0%	0
0203.19.00	--Other	0%	0
0203.2	-Frozen:		
0203.21.00	--Carcasses and half-carcasses	0%	0
0203.22.00	--Hams, shoulders and cuts thereof, with bone in	0%	0
0203.29.00	--Other	0%	0
0204	MEAT OF SHEEP OR GOATS, FRESH, CHILLED OR FROZEN:		
0204.10.00	-Carcasses and half-carcasses of lamb, fresh or chilled	0%	0
0204.2	-Other meat of sheep, fresh or chilled:		
0204.21.00	--Carcasses and half-carcasses	0%	0
0204.22.00	--Other cuts with bone in	0%	0
0204.23.00	--Boneless	0%	0
0204.30.00	-Carcasses and half-carcasses of lamb, frozen	0%	0
0204.4	-Other meat of sheep, frozen:		
0204.41.00	--Carcasses and half-carcasses	0%	0
0204.42.00	--Other cuts with bone in	0%	0
0204.43.00	--Boneless	0%	0
0204.50.00	-Meat of goats	0%	0
0205.00.00	MEAT OF HORSES, ASSES, MULES OR HINNIES, FRESH, CHILLED OR FROZEN	0%	0
0206	EDIBLE OFFAL OF BOVINE ANIMALS, SWINE, SHEEP, GOATS, HORSES, ASSES, MULES OR HINNIES, FRESH, CHILLED OR FROZEN:		
0206.10.00	-Of bovine animals, fresh or chilled	0%	0
0206.2	-Of bovine animals, frozen:		
0206.21.00	--Tongues	0%	0
0206.22.00	--Livers	0%	0
0206.29.00	--Other	0%	0
0206.30.00	-Of swine, fresh or chilled	0%	0
0206.4	-Of swine, frozen:		
0206.41.00	--Livers	0%	0
0206.49.00	--Other	0%	0
0206.80.00	-Other, fresh or chilled	0%	0
0206.90.00	-Other, frozen	0%	0
0207	MEAT AND EDIBLE OFFAL, OF THE POULTRY OF 0105, FRESH, CHILLED OR FROZEN:		
0207.1	-Of the fowls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0207.11.00	--Not cut in pieces, fresh or chilled	0%	0
0207.12.00	--Not cut in pieces, frozen	0%	0
0207.13.00	--Cuts and offal, fresh or chilled	0%	0
0207.14.00	--Cuts and offal, frozen	0%	0
0207.2	-Of turkeys:		
0207.24.00	--Not cut in pieces, fresh or chilled	0%	0
0207.25.00	--Not cut in pieces, frozen	0%	0
0207.26.00	--Cuts and offal, fresh or chilled	0%	0
0207.27.00	--Cuts and offal, frozen	0%	0
0207.4	Of ducks:		
0207.41.00	--Not cut in pieces, fresh or chilled	0%	0
0207.42.00	--Not cut in pieces, frozen	0%	0
0207.43.00	--Fatty livers, fresh or chilled	0%	0
0207.44.00	--Other, fresh or chilled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0207.45.00	--Other, frozen	0%	0
0207.5	-Of geese:		
0207.51.00	--Not cut in pieces, fresh or chilled	0%	0
0207.52.00	--Not cut in pieces, frozen	0%	0
0207.53.00	--Fatty livers, fresh or chilled	0%	0
0207.54.00	--Other, fresh or chilled	0%	0
0207.55.00	--Other, frozen	0%	0
0207.60.00	-Of guinea fowls	0%	0
0208	OTHER MEAT AND EDIBLE MEAT OFFAL, FRESH, CHILL'ED OR FROZEN:		
0208.10.00	-Of rabbits or hares	0%	0
0208.30.00	-Of primates	0%	0
0208.40.00	-Of whales, dolphins and porpoises (mammals of the order Cetacea); of manatees and dugongs (mammals of the order Sirenia); of seals, sea lions and walruses (mammals of the suborder Pinnipedia)	0%	0
0208.50.00	-Of reptiles (including snakes and turtles)	0%	0
0208.60.00	-Of camels and other camelids (Camelidae)	0%	0
0208.90.00	-Other	0%	0
0209	PIG FAT, FREE OF LEAN MEAT, AND POULTRY FAT, NOT RENDERED OR OTHERWISE EXTRACTED, FRESH, CHILLED, FROZEN, SALTED, IN BRINE, DRIED OR SMOKED:		
0209.10.00	-Of pigs	0%	0
0209.90.00	-Other	0%	0
0210	MEAT AND EDIBLE MEAT OFFAL, SALTED, IN BRINE, DRIED OR SMOKED; EDIBLE FLOURS AND MEALS OF MEAT OR MEAT OFFAL:		
0210.1	-Meat of swine:		
0210.11.00	--Hams, shoulders and cuts thereof, with bone in	0%	0
0210.12.00	--Bellies (streaky) and cuts thereof	0%	0
0210.19.00	--Other	0%	0
0210.20.00	-Meat of bovine animals	0%	0
0210.9	-Other, including edible flours and meals of meat or meat offal:		
0210.91.00	--Of primates	0%	0
0210.92.00	--Of whales, dolphins and porpoises (mammals of the order Cetacea); of manatees and dugongs (mammals of the order Sirenia); of seals, sea lions and walruses (mammals of the suborder Pinnipedia)	0%	0
0210.93.00	--Of reptiles (including snakes and turtles)	0%	0
0210.99.00	--Other	0%	0
03	FISH AND CRUSTACEANS, MOLLUSCS AND OTHER AQUATIC INVERTEBRATES		
0301	LIVE FISH:		
0301.1	-Ornamental fish:		
0301.11.00	--Freshwater	0%	0
0301.19.00	--Other	0%	0
0301.9	-Other live fish:		
0301.91.00	--Trout (Salmo trutta, Oncorhynchus mykiss, Oncorhynchus clarki, Oncorhynchus aguabonita, Oncorhynchus gilae, Oncorhynchus apache and Oncorhynchus chrysogaster)	0%	0
0301.92.00	--Eels (Anguilla spp.)	0%	0
0301.93.00	--Carp (Cyprinus carpio, Carassius carssius, ctenophary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0%	0
0301.94.00	--Atlantic and Pacific bluefin tunas (Thunnus thynnus, Thunnus orientalis)	0%	0
0301.95.00	--Southern bluefin tunas (Thunnus maccoyii)	0%	0
0301.99.00	--Other	0%	0
0302	FISH, FRESH OR CHILLED, EXCLUDING FISH FILLETS AND OTHER FISH MEAT OF 0304:		
0302.1	-Salmonidae, excluding livers and roes:		
0302.11.00	--Trout (Salmo trutta, Oncorhynchus mykiss, Oncorhynchus clarki, Oncorhynchus aguabonita, Oncorhynchus gilae, Oncorhynchus apache and Oncorhynchus chrysogaster)	0%	0
0302.13.00	--Pacific salmon (Oncorhynchus nerka, Oncorhynchus gorbuscha, Oncorhynchus keta, Oncorhynchus tschawytscha, Oncorhynchus kisutch, Oncorhynchus masou and Oncorhunchus rhodurus)	0%	0
0302.14.00	--Atlantic slamon (Salmo salar) and Danube Salmon (Hucho hucho)	0%	0
0302.19.00	--Other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0302.2	-Flat fish (Pleuronectidae, Bothidae, Cynoglossidae, Soleidae, Scophthalmidae and Citharidae), excluding livers and roes:		
0302.21.00	--Halibut (Reinhardtius hippoglossoides, Hippoglossus hippoglossus, Hippoglossus stenolepis)	0%	0
0302.22.00	--Plaice (Pleuronectes platessa)	0%	0
0302.23.00	--Sole (Solea spp.)	0%	0
0302.24.00	--Turbots (Psetta maxima)	0%	0
0302.29.00	--Other	0%	0
0302.3	-Tunas (of the genus Thunnus), skipjack or stripe-bellied bonito (Euthynnus (Katsuwonus) pelamis), excluding livers and roes:		
0302.31.00	--Albacore or longfinned tunas (Thunnus alalunga)	0%	0
0302.32.00	--Yellowfin tunas (Thunnus albacares)	0%	0
0302.33.00	--Skipjack or stripe-bellied bonito	0%	0
0302.34.00	--Bigeye tunas (Thunnus obesus)	0%	0
0302.35.00	--Atlantic and Pacific bluefin tunas (Thunnus thynnus, Thunnus orientalis)	0%	0
0302.36.00	--Southern bluefin tunas (Thunnus maccoyii)	0%	0
0302.39.00	--Other	0%	0
0302.4	-Herrings (Clupea harengus, Clupea pallasii), anchovies (Engraulis spp.), sardines (Sardina pilchardus, Sardinops spp.), sardinella (Sardinella spp.), brisling or sprats (Sprattus sprattus), mackerel (Scomber scombrus, Scomber australasicus, Scomber japonicus), jack and horse mackerel (Trachurus spp.), cobia (Rachycentron canadum) and swordfish (Xiphias gladius), excluding livers and roes:		
0302.41.00	--Herrings (Clupea harengus, Clupea pallasii)	0%	0
0302.42.00	--Anchovies (Engraulis spp.)	0%	0
0302.43.00	--Sardines (Sardina pilchardus, Sardinops spp.), sardinella (Sardinella spp.), brisling or sprats (Sprattus sprattus)	0%	0
0302.44.00	--Mackerel (Scomber scombrus, Scomber australasicus, Scomber japonicus)	0%	0
0302.45.00	--Jack and horse mackerel (Trachurus spp.)	0%	0
0302.46.00	--Cobia (Rachycentron canadum)	0%	0
0302.47.00	--Swordfish (Xiphias gladius)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0302.5	-Fish of the families Bregmacerotidae, Euclichthyidae, Gadidae, Macrouridae, Melanonidae, Merlucciidae, Moridae and Muraenolepididae, excluding livers and roes:		
0302.51.00	--Cod (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rocephalus)	0%	0
0302.52.00	--Haddock (Melanogrammus aeglefinus)	0%	0
0302.53.00	--Coalfish (Pollachius virens)	0%	0
0302.54.00	--Hake (Merluccius spp., urophycis spp.)	0%	0
0302.55.00	--Alaska pollack (Theraga chalcogramma)	0%	0
0302.56.00	--Blue whiting (Micromesistius poutassou, Micromesistius australis)	0%	0
0302.59.00	--Other	0%	0
0302.7	-Tilapias (Oreochromis spp.), catfish (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carp (Cyprinus carpio, Carassius car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eels (Anguilla spp.), Nile perch (lates niloticus) and snakeheads (Channa spp.), excluding livers and roes:		
0302.71.00	--Tilapias (Oreochromis spp.)	0%	0
0302.72.00	--Catfish (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0%	0
0302.73.00	--Carp (Cyprinus carpio, Carassius car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0%	0
0302.74.00	--Eels (Anguilla spp.)	0%	0
0302.79.00	--Other	0%	0
0302.8	-Other fish, excluding livers and roes:		
0302.81.00	--Dogfish and other sharks	0%	0
0302.82.00	--Rays and skates (Rajidae)	0%	0
0302.83.00	--Toothfish (Dissostichus spp.)	0%	0
0302.84.00	--Seabass (Dicentrarchus spp.)	0%	0
0302.85.00	--Seabream (Sparidae)	0%	0
0302.89.00	--Other	0%	0
0302.90.00	-Livers and roes	0%	0
0303	FISH, FROZEN, EXCLUDING FISH FILLETS AND OTHER FISH MEAT OF 0304:		
0303.1	-Salmonidae, excluding livers and roes:		
0303.11.00	--Sockeye salmon (red salmon) (Oncorhynchus nerka)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0303.12.00	--Other Pacific salmon (Oncorhynchus gorbuscha, Oncorhynchus keta, Oncorhynchus tschawytscha, Oncorhynchus kisutch, Oncorhynchus masou and Oncorhynchus rhodurus)	0%	0
0303.13.00	--Atlantic salmon (Salmo salar) and Danube salmon (Hucho hucho)	0%	0
0303.14.00	--Trout (Salmo trutta, Oncorhynchus mykiss, Oncorhynchus clarki, Oncorhynchus aguabonita, Oncorhynchus gilae, Oncorhynchus apache and Oncorhynchus chrysogaster)	0%	0
0303.19.00	--Other	0%	0
0303.2	-Tilapias (Oreochromis spp.), catfish (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carp (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eels (Anguilla spp.), Nile perch (Lates niloticus) and snakeheads (Channa spp.), excluding livers and roes:		
0303.23.00	--Tilapias (Oreochromis spp.)	0%	0
0303.24.00	--Catfish (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0%	0
0303.25.00	--Carp (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0%	0
0303.26.00	--Eels (Anguilla spp.)	0%	0
0303.29.00	--Other	0%	0
0303.3	-Flat fish (Pleuronectidae, Bothidae, Cynoglossidae, Soleidae, Scophthalmidae and Citharidae), excluding livers and roes:		
0303.31.00	--Halibut (Reinhardtius hippoglossoides, Hippoglossus hippoglossus, Hippoglossus stenolepis)	0%	0
0303.32.00	--Plaice (Pleuronectes platessa)	0%	0
0303.33.00	--Sole (Solea spp.)	0%	0
0303.34.00	--Turbots (Psetta maxima)	0%	0
0303.39.00	--Other	0%	0
0303.4	-Tunas (of the genus Thunnus), skipjack or stripe-bellied bonito (Euthynnus (Katsuwonus) pelamis), excluding livers and roes:		
0303.41.00	--Albacore or longfinned tunas (Thunnus alalunga)	0%	0
0303.42.00	--Yellowfin tunas (Thunnus albacares)	0%	0
0303.43.00	--Skipjack or stripe-bellied bonito	0%	0
0303.44.00	--Bigeye tunas (Thunnus obesus)	0%	0
0303.45.00	--Atlantic and Pacific bluefin tunas (Thunnus thynnus, Thunnus orientalis)	0%	0
0303.46.00	--Southern bluefin tunas (Thunnus maccoyii)	0%	0
0303.49.00	--Other	0%	0
0303.5	-Herrings (Clupea harengus, Clupea pallasii), anchovies (Engraulis spp.), sardines (Sardina pilchardus, Sardinops spp.), sardinella (Sardinella spp.), brisling or sprats (Sprattus sprattus), mackerel (Scomber scombrus, Scomber australasicus, Scomber japonicus), jack and horse mackerel (Trachurus spp.), cobia (Rachycentron canadum) and swordfish (Xiphias gladius), excluding livers and roes:		
0303.51.00	--Herrings (Clupea harengus, Clupea pallasii)	0%	0
0303.53.00	--Sardines (Sardina pilchardus, Sardinops spp.), sardinella (Sardinella spp.), brisling or sprats (Sprattus sprattus)	0%	0
0303.54.00	--Mackerel (Scomber scombrus, Scomber australasicus, Scomber japonicus)	0%	0
0303.55.00	--Jack and horse mackerel (Trachurus spp.)	0%	0
0303.56.00	--Cobia (Rachycentron canadum)	0%	0
0303.57.00	--Swordfish (Xiphias gladius)	0%	0
0303.6	-Fish of the families Bregmacerotidae, Euclichthyidae, Gadidae, Macrouridae, Melanonidae, Merlucciidae, Moridae and Muraenolepididae, excluding livers and roes:		
0303.63.00	--Cod (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rocephalus)	0%	0
0303.64.00	--Haddock (Melanogrammus aeglefinus)	0%	0
0303.65.00	--Coalfish (Pollachius virens)	0%	0
0303.66.00	--Hake (Merluccius spp., Urophycis spp.)	0%	0
0303.67.00	--Alaska pollack (Theragra chalcogramma)	0%	0
0303.68.00	--Blue whiting (Micromesistius poutassou, Micromesistius australis)	0%	0
0303.69.00	--Other	0%	0
0303.8	-Other fish, excluding livers and roes:		
0303.81.00	--Dogfish and other sharks	0%	0
0303.82.00	--Rays and skates (Rajidae)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0303.83.00	--Toothfish (Dissostichus spp.)	0%	0
0303.84.00	--Seabass (Dicentrarchus spp.)	0%	0
0303.89.00	--Other	0%	0
0303.90.00	-Livers and roes	0%	0
0304	FISH FILLETS AND OTHER FISH MEAT (WHETHER OR NOT MINCED), FRESH, CHILLED OR FROZEN:		
0304.3	-Fresh or chilled fillets of tilapias (Oreochromis spp.), catfish (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carp (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eels (Anguilla spp.), Nile perch (Lates niloticus) and snakeheads (Channa spp.):		
0304.31.00	--Tilapias (Oreochromis spp.)	0%	0
0304.32.00	--Catfish (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0%	0
0304.33.00	--Nile perch (Lates niloticus)	0%	0
0304.39.00	--Other	0%	0
0304.4	-Fresh or chilled fillets of other fish:		
0304.41.00	--Pacific salmon (Oncorhynchus nerka, Oncorhynchus gorbuscha, Oncorhynchus keta, Oncorhynchus tschawytscha, Oncorhynchus kisutch, Oncorhynchus masou and Oncorhynchus rhodurus), Atlantic salmon (Salmo salar) and Danube salmon (Hucho hucho)	0%	0
0304.42.00	--Trout (Salmo trutta, Oncorhynchus mykiss, Oncorhynchus clarki, Oncorhynchus aguabonita, Oncorhynchus gilae, Oncorhynchus apache and Oncorhynchus chrysogaster)	0%	0
0304.43.00	--Flat fish (Pleuronectidae, Bothidae, Cynoglossidae, Soleidae, Scophthalmidae and Citharidae)	0%	0
0304.44.00	--Fish of the families Bregmacerotidae, Euclichthyidae, Gadidae, Macrouridae, Melanonidae, Moridae and Muraenolepididae	0%	0
0304.45.00	--Swordfish (Xiphias gladius)	0%	0
0304.46.00	--Toothfish (Dissostichus spp.)	0%	0
0304.49.00	--Other	0%	0
0304.5	-Other, fresh or chilled:		
0304.51.00	--Tilapias (Oreochromis spp.), catfish (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carp (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eels (Anguilla spp.), Nile perch (Lates niloticus) and snakeheads (Channa spp.)	0%	0
0304.52.00	--Salmonidae	0%	0
0304.53.00	--Fish of the families Bregmacerotidae, Euclichthyidae, Gadidae, Macrouridae, Melanonidae, Merlucciidae, Moridae and Muraenolepididae	0%	0
0304.54.00	--Swordfish (Xiphias gladius)	0%	0
0304.55.00	--Toothfish (Dissostichus spp.)	0%	0
0304.59.00	--Other	0%	0
0304.6	-Frozen fillets of tilapias (Oreochromis spp.), catfish (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carp (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eels (Anguilla spp.), Nile perch (Lates niloticus) and snakeheads (Channa spp.):		
0304.61.00	--Tilapias (Oreochromis spp.)	0%	0
0304.62.00	--Catfish (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0%	0
0304.63.00	--Nile perch (Lates niloticus)	0%	0
0304.69.00	--Other	0%	0
0304.7	--Frozen fillets of fish of the families Bregmacerotidae, Euclichthyidae, Gadidae, Macrouridae, Melanonidae, Merlucciidae, Moridae and Muraenolepididae:		
0304.71.00	--Cod (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rocephalus)	0%	0
0304.72.00	--Haddock (Melanogrammus aeglefinus)	0%	0
0304.73.00	--Coalfish (Pollachius virens)	0%	0
0304.74.00	--Hake (Merluccius spp., Urophycis spp.)	0%	0
0304.75.00	--Alaska pollack (Theragra chalcogramma)	0%	0
0304.79.00	--Other	0%	0
0304.8	-Frozen fillets of other fish: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0304.81.00	--Pacific salmon (Oncorhynchus nerka, Oncorhynchus gorbuscha, Oncorhynchus keta, Oncorhynchus tschawytscha, Oncorhynchus kisutch, Oncorhynchus masou and Oncorhynchus rhodurus), Atlantic salmon (Salmo salar) and Danube salmon (Hucho hucho)	0%	0
0304.82.00	--Trout (Salmo trutta, Oncorhynchus mykiss, Oncorhynchus clarki, Oncorhynchus aguabonita, Oncorhynchus gilae, Oncorhynchus apache and Oncorhynchus chrysogaster)	0%	0
0304.83.00	--Flat fish (Pleuronectidae, Bothidae, Cynoglossidae, Soleidae, Scophthalmidae and Citharidae)	0%	0
0304.84.00	--Swordfish (Xiphias gladius)	0%	0
0304.85.00	--Toothfish (Dissostichus spp.)	0%	0
0304.86.00	--Herrings (Clupea harengus, Clupea pallasii)	0%	0
0304.87.00	--Tunas (of the genus Thunnus), skipjack or stripe-bellied bonito (Euthynnus (Katsuwonus) pelamis)	0%	0
0304.89.00	--Other	0%	0
0304.9	-Other, frozen:		
0304.91.00	--Swordfish (Xiphias gladius)	0%	0
0304.92.00	--Toothfish (Dissostichus spp.)	0%	0
0304.93.00	--Tilapias (Oreochromis spp.), catfish (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carp (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eels (Anguilla spp.), Nile perch (Lates niloticus) and snakeheads (Channa spp.)	0%	0
0304.94.00	--Alaska pollack (Theragra chalcogramma)	0%	0
0304.95.00	--Fish of the families Bregmacerotidae, Euclichthyidae, Gadidae, Macrouridae, Melanonidae, Merlucciidae, Moridae and Muraenolepididae, other than Alaska pollack (Theragra chalcogramma)	0%	0
0304.99.00	--Other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0305	FISH, DRIED, SALTED OR IN BRINE; SMOKED FISH, WHETHER OR NOT COOKED BEFORE OR DURING THE SMOKING PROCESS; FLOURS, MEALS AND PELLETS OF FISH, FIT FOR HUMAN CONSUMPTION:		
0305.10.00	-Flours, meals and pellets of fish, fit for human consumption	0%	0
0305.20.00	-Livers and roes of fish, dried, smoked, salted or in brine	0%	0
0305.3	-Fish fillets, dried, salted or in brine, but not smoked:		
0305.31.00	--Tilapias (Oreochromis spp.), catfish (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carp (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eels (Anguilla spp.), Nile perch (Lates niloticus) and snakeheads (Channa spp.)	0%	0
0305.32.00	--Fish of the families Bregmacerotidae, Euclichthyidae, Gadidae, Macrouridae, Melanonidae, Merlucciidae, Moridae and Muraenolepididae	0%	0
0305.39.00	--Other	0%	0
0305.4	-Smoked fish, including fillets, other than edible fish offal:		
0305.41.00	--Pacific salmon (Oncorhynchus nerka, Oncorhynchus gorbuscha, Oncorhynchus keta, Oncorhynchus tschawytscha, Oncorhynchus kisutch, Oncorhynchus masou and Oncorhynchus rhodurus), Atlantic salmon (Salmo salar) and Danube salmon (Hucho hucho)	0%	0
0305.42.00	--Herrings (Clupea harengus, Clupea pallasii)	0%	0
0305.43.00	--Trout (Salmo trutta, Oncorhynchus mykiss, Oncorhynchus clarki, Oncorhynchus aguabonita, Oncorhynchus gilae, Oncorhynchus apache and Oncorhynchus chrysogaster)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0305.44.00	--Tilapias (Oreochromis spp.), catfish (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carp (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eels (Anguilla spp.), Nile perch (Lates niloticus) and snakeheads (Channa spp.)	0%	0
0305.49.00	--Other	0%	0
0305.5	-Dried fish, other than edible fish offal, whether or not salted but not smoked:		
0305.51.00	--Cod (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rocephalus)	0%	0
0305.59.00	--Other	0%	0
0305.6	-Fish, salted but not dried or smoked and fish in brine, other than edible fish offal:		
0305.61.00	--Herrings (Clupea harengus, Clupea pallasii)	0%	0
0305.62.00	--Cod (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rocephalus)	0%	0
0305.63.00	--Anchovies (Engraulis spp.)	0%	0
0305.64.00	--Tilapias (Oreochromis spp.), catfish (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carp (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eels (Anguilla spp.), Nile perch (Lates niloticus) and snakeheads (Channa spp.)	0%	0
0305.69.00	--Other	0%	0
0305.7	-Fish fins, heads, tails, maws and other edible fish offal:		
0305.71.00	--Shark fins	0%	0
0305.72.00	--Fish heads, tails and maws	0%	0
0305.79.00	--Other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0306	CRUSTACEANS, WHETHER IN SHELL OR NOT, LIVE, FRESH, CHILLED, FROZEN, DRIED, SALTED OR IN BRINE; SMOKED CRUSTACEANS, WHETHER IN SHELL OR NOT , WHETHER OR NOT COOKED BEFORE OR DURING THE SMOKING PROCESS; CRUSTACEANS, IN SHELL, BY STEAMING OR BY BOILING IN WATER, WHETHER OR NOT CHILLED, FROZEN, DRIED, SALTED OR IN BRINE; FLOURS, MEALS AND PELLETS OF CRUSTACEANS, FIT FOR HUMAN CONSUMPTION:		
0306.1	-Frozen:		
0306.11.00	--Rock lobster and other sea crawfish (Palinurus spp., Panulirus spp., Jasus spp.)	0%	0
0306.12.00	--Lobsters (Homarus spp.)	0%	0
0306.14.00	--Crabs	0%	0
0306.15.00	--Norway lobsters (Nephrops norvegicus)	0%	0
0306.16.00	--Cold-water shrimps and prawns (Pandalus spp., Crangon crangon)	0%	0
0306.17.00	--Other shrimps and prawns	0%	0
0306.19.00	--Other, including flours, meals and pellets of crustaceans, fit for human consumption	0%	0
0306.2	-Not frozen:		
0306.21.00	--Rock lobster and other sea crawfish (Palinurus spp., Panulirus spp., Jasus spp.)	0%	0
0306.22.00	--Lobsters (Homarus spp.)	0%	0
0306.24.00	--Crabs	0%	0
0306.25.00	--Norway lobsters (Nephrops norvegicus)	0%	0
0306.26.00	--Cold-water shrimps and prawns (Pandalus spp., Crangon crangon)	0%	0
0306.27.00	--Other shrimps and prawns	0%	0
0306.29.00	--Other, including flours, meals and pellets of crustaceans, fit for human consumption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0307	MOLLUSCS, WHETHER IN SHELL OR NOT, LIVE, FRESH, CHILLED, FROZEN, DRIED, SALTED OR IN BRINE; SMOKED MOLLUSCS, WHETHER IN SHELL OR NOT, WHETHER OR NOT COOKED BEFORE OR DURING THE SMOKING PROCESS; FLOURS, MEALS AND PELLETS OF MOLLUSCS, FIT FOR HUMAN CONSUMPTION:		
0307.1	-Oysters:		
0307.11.00	--Live, fresh or chilled	0%	0
0307.19.00	--Other	0%	0
0307.2	-Scallops, including queen scallops, of the genera Pecten, Chlamys or Placopecten:		
0307.21.00	--Live, fresh or chilled	0%	0
0307.29.00	--Other	0%	0
0307.3	-Mussels (Mytilus spp., Perna spp.):		
0307.31.00	--Live, fresh or chilled	0%	0
0307.39.00	--Other	0%	0
0307.4	-Cuttle fish (Sepia officinalis, Rossia macrosoma, Sepiola spp.) and squid (Ommastrephes spp., Loligo spp., Nototodarus spp., Sepioteuthis spp.):		
0307.41.00	--Live, fresh or chilled	0%	0
0307.49.00	--Other	0%	0
0307.5	-Octopus (Octopus spp.):		
0307.51.00	--Live, fresh or chilled	0%	0
0307.59.00	--Other	0%	0
0307.60.00	-Snails, other than sea snails	0%	0
0307.7	-Clams, cockles and arkshells (families Arcidae, Arcticidae, Cardiidae, Donacidae, Hiatellidae, Mactridae, Mesodesmatidae, Myidae, Semelidae, Solecurtidae, Solenidae, Tridacnidae and Veneridae):		
0307.71.00	--Live, fresh or chilled	0%	0
0307.79.00	--Other	0%	0
0307.8	-Ablaone (Haliotis spp.):		
0307.81.00	--Live, fresh or chilled	0%	0
0307.89.00	--Other	0%	0
0307.9	-Other, including flours, meals and pellets, fit for human consumption:		
0307.91.00	--Live, fresh or chilled	0%	0
0307.99.00	--Other	0%	0
0308	Aquatic invertebrates other than crustaceans and molluscs, live, fresh, chilled, frozen, dried, salted or in brine; smoked aquatic invertebrates other than crustaceans and molluscs, whether or not cooked before or during the smoking process; flours, meals and pellets of aquatic invertebrates other than crustaceans and molluscs, fit for human consumption:		
0308.1	-Sea cucumbers (Stichopus japonicus, Holothurioidea):		
0308.11.00	--Live, fresh or chilled	0%	0
0308.19.00	--Other	0%	0
0308.2	-Sea urchins (Strongylocentrotus spp., Paracentrotus lividus, Loxechinus albus, Echichinus esculentus):		
0308.21.00	--Live, fresh or chilled	0%	0
0308.29.00	--Other	0%	0
0308.30.00	-Jellyfish (Rhopilema spp.)	0%	0
0308.90.00	-Other	0%	0
04	DAIRY PRODUCE; BIRDS' EGGS; NATURAL HONEY; EDIBLE PRODUCTS OF ANIMAL ORIGIN,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0401	MILK AND CREAM, NOT CONCENTRATED NO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0401.10.00	-Of a fat content, by weight, not exceeding 1%	0%	0
0401.20.00	-Of a fat content, by weight, exceeding 1% but not exceeding 6%	0%	0
0401.40.00	-Of a fat content, by weight, exceeding 6% but not exceeding 10%	0%	0
0401.50.00	-Of a fat content, by weight, exceeding 10%	0%	0
0402	MILK AND CREAM, CONCENTRATED O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0402.10.00	-In powder, granules or other solid forms, of a fat content, by weight, not exceeding 1.5%	0%	0
0402.2	-In powder, granules or other solid forms, of a fat content, by weight, exceeding 1.5%:		
0402.21.00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0%	0
0402.29.00	--Other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0402.9	-Other:		
0402.91.00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0%	0
0402.99.00	--Other	0%	0
0403	BUTTERMILK, CURDLED MILK AND CREAM, YOGURT, KEPHIR AND OTHER FERMENTED OR ACIDIFIED MILK AND CREAM, WHETHER OR NOT CONCENTRATED O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OR FLAVOURED OR CONTAINING ADDED FRUIT, NUTS OR COCOA:		
0403.10.00	-Yogurt	0%	0
0403.90.00	-Other	0%	0
0404	WHEY, WHETHER OR NOT CONCENTRATED O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PRODUCTS CONSISTING OF NATURAL MILK CONSTITUENTS,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0404.10.00	-Whey and modified whey, whether or not concentrated o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0%	0
0404.90.00	-Other	0%	0
0405	BUTTER AND OTHER FATS AND OILS DERIVED FROM MILK; DAIRY SPREADS:		
0405.10.00	-Butter	0%	0
0405.20.00	-Dairy spreads	4%	0
0405.90.00	-Other	0%	0
0406	CHEESE AND CURD:		
0406.10.00	-Fresh (unripened or uncured) cheese, including whey cheese, and curd	$1.220/kg	0
0406.20.00	-Grated or powdered cheese, of all kinds	$1.220/kg	0
0406.30.00	-Processed cheese, not grated or powdered	$1.220/kg	0
0406.40	-Blue-veined cheese and other cheese containing veins produced by Penicillium roqueforti:		
0406.40.10	---Cheese, of the following types: (a) roquefort; (b) stilton	0%	0
0406.40.90	---Other	$1.220/kg	0
0406.90	-Other cheese:		
0406.90.10	---Cheese, of the following types: (a) made wholly from goats' milk, other than fetta or kasseri; (b) surface-ripened soft, having: (i) a fat content in the dry matter of not less than 50% by weight; and (ii) a moisture content of not less than 65% by weight of the non-fatty matter	0%	0
0406.90.90	---Other	$1.220/kg	0
0407	BIRDS' EGGS, IN SHELL, FRESH, PRESERVED OR COOKED:		
0407.1	-Fertilised eggs for incubation:		
0407.11.00	--Of fowls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0%	0
0407.19.00	--Other	0%	0
0407.2	-Other fresh eggs:		
0407.21.00	--Of fowls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0%	0
0407.29.00	--Other	0%	0
0407.90.00	-Other	0%	0
0408	BIRDS' EGGS, NOT IN SHELL, AND EGG YOLKS, FRESH, DRIED, COOKED BY STEAMING OR BY BOILING IN WATER, MOULDED, FROZEN OR OTHERWISE PRESERVED,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0408.1	-Egg yolks:		
0408.11.00	--Dried	0%	0
0408.19.00	--Other	0%	0
0408.9	-Other:		
0408.91.00	--Dried	0%	0
0408.99.00	--Other	0%	0
0409.00.00	NATURAL HONEY	0%	0
0410.00.00	EDIBLE PRODUCTS OF ANIMAL ORIGIN,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0%	0
05	PRODUCTS OF ANIMAL ORIGIN,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0501.00.00	HUMAN HAIR, UNWORKED, WHETHER OR NOT WASHED OR SCOURED; WASTE OF HUMAN HAIR	0%	0
0502	PIGS', HOGS' OR BOARS' BRISTLES AND HAIR; BADGER HAIR AND OTHER BRUSH MAKING HAIR; WASTE OF SUCH BRISTLES OR HAIR: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0502.10.00	-Pigs', hogs' or boars' bristles and hair and waste thereof	0%	0
0502.90.00	-Other	0%	0
0504.00.00	GUTS, BLADDERS AND STOMACHS OF ANIMALS (OTHER THAN FISH), WHOLE AND PIECES THEREOF, FRESH, CHILLED, FROZEN, SALTED, IN BRINE, DRIED OR SMOKED	0%	0
0505	SKINS AND OTHER PARTS OF BIRDS, WITH THEIR FEATHERS OR DOWN, FEATHERS AND PARTS OF FEATHERS (WHETHER OR NOT WITH TRIMMED EDGES) AND DOWN, NOT FURTHER WORKED THAN CLEANED, DISINFECTED OR TREATED FOR PRESERVATION; POWDER AND WASTE OF FEATHERS OR PARTS OF FEATHERS:		
0505.10.00	-Feathers of a kind used for stuffing; down	0%	0
0505.90.00	-Other	0%	0
0506	BONES AND HORN-CORES, UNWORKED, DEFATTED, SIMPLY PREPARED (BUT NOT CUT TO SHAPE), TREATED WITH ACID OR DEGELATINISED; POWDER AND WASTE OF THESE PRODUCTS:		
0506.10.00	-Ossein and bones treated with acid	0%	0
0506.90.00	-Other	0%	0
0507	IVORY, TORTOISE-SHELL, WHALEBONE AND WHALEBONE HAIR, HORNS, ANTLERS, HOOVES, NAILS, CLAWS AND BEAKS, UNWORKED OR SIMPLY PREPARED BUT NOT CUT TO SHAPE; POWDER AND WASTE OF THESE PRODUCTS:		
0507.10.00	-Ivory; ivory powder and waste	0%	0
0507.90.00	-Other	0%	0
0508.00.00	CORAL AND SIMILAR MATERIALS, UNWORKED OR SIMPLY PREPARED BUT NOT OTHERWISE WORKED; SHELLS OF MOLLUSCS, CRUSTACEANS OR ECHINODERMS AND CUTTLE-BONE, UNWORKED OR SIMPLY PREPARED BUT NOT CUT TO SHAPE, POWDER AND WASTE THEREOF	0%	0
0510.00.00	AMBERGRIS, CASTOREUM, CIVET AND MUSK; CANTHARIDES; BILE, WHETHER OR NOT DRIED; GLANDS AND OTHER ANIMAL PRODUCTS USED IN THE PREPARATION OF PHARMACEUTICAL PRODUCTS, FRESH, CHILLED, FROZEN OR OTHERWISE PROVISIONALLY PRESERVED	0%	0
0511	ANIMAL PRODUCT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DEAD ANIMALS OF CHAPTER 1 OR 3, UNFIT FOR HUMAN CONSUMPTION:		
0511.10.00	-Bovine semen	0%	0
0511.9	-Other:		
0511.91.00	--Products of fish or crustaceans, molluscs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s; dead animals of Chapter 3	0%	0
0511.99	--Other:		
0511.99.10	---Horsehair and horsehair waste, whether or not put up as a layer with or without supporting material	5%	0
0511.99.90	---Other	0%	0
06	LIVE TREES AND OTHER PLANTS; BULBS, ROOTS AND THE LIKE; CUT FLOWERS AND ORNAMENTAL FOLIAGE		
0601	BULBS, TUBERS, TUBEROUS ROOTS, CORMS, CROWNS AND RHIZOMES, DORMANT, IN GROWTH OR IN FLOWER; CHICORY PLANTS AND ROOTS OTHER THAN ROOTS OF 1212:		
0601.10.00	-Bulbs, tubers, tuberous roots, corms, crowns and rhizomes, dormant	0%	0
0601.20.00	-Bulbs, tubers, tuberous roots, corms, crowns and rhizomes, in growth or in flower; chicory plants and roots	0%	0
0602	OTHER LIVE PLANTS (INCLUDING THEIR ROOTS), CUTTINGS AND SLIPS; MUSHROOM SPAWN:		
0602.10.00	-Unrooted cuttings and slips	0%	0
0602.20.00	-Trees, shrubs and bushes, grafted or not, of kinds which bear edible fruit or nuts	0%	0
0602.30.00	-Rhododendrons and azaleas, grafted or not	0%	0
0602.40.00	-Roses, grafted or not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0602.90.00	-Other	0%	0
0603	CUT FLOWERS AND FLOWER BUDS OF A KIND SUITABLE FOR BOUQUETS OR FOR ORNAMENTAL PURPOSES, FRESH, DRIED, DYED, BLEACHED, IMPREGNATED OR OTHERWISE PREPARED:		
00603.1	-Fresh:		
0603.11.00	--Roses	0%	0
0603.12.00	--Carnations	0%	0
0603.13.00	--Orchids	0%	0
0603.14.00	--Chrysanthemums	0%	0
0603.15.00	--Lilies (Lilium spp.)	0%	0
0603.19.00	--Other	0%	0
0603.90.00	-Other	0%	0
0604	FOLIAGE, BRANCHES AND OTHER PARTS OF PLANTS, WITHOUT FLOWERS OR FLOWER BUDS, AND GRASSES, MOSSES AND LICHENS, BEING GOODS OF A KIND SUITABLE FOR BOUQUETS OR FOR ORNAMENTAL PURPOSES, FRESH, DRIED, DYED, BLEACHED, IMPREGNATED OR OTHERWISE PREPARED:		
0604.20.00	-Fresh	0%	0
0604.90.00	-Other	0%	0
07	EDIBLE VEGETABLES AND CERTAIN ROOTS AND TUBERS		
0701	POTATOES, FRESH OR CHILLED:		
0701.10.00	-Seed	0%	0
0701.90.00	-Other	0%	0
0702.00.00	TOMATOES, FRESH OR CHILLED	0%	0
0703	ONIONS, SHALLOTS, GARLIC, LEEKS AND OTHER ALLIACEOUS VEGETABLES, FRESH OR CHILLED:		
0703.10.00	-Onions and shallots	0%	0
0703.20.00	-Garlic	0%	0
0703.90.00	-Leeks and other alliaceous vegetables	0%	0
0704	CABBAGES, CAULIFLOWERS, KOHLRABI, KALE AND SIMILAR EDIBLE BRASSICAS, FRESH OR CHILLED:		
0704.10.00	-Cauliflowers and headed broccoli	0%	0
0704.20.00	-Brussels sprouts	0%	0
0704.90.00	-Other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0705	LETTUCE (Lactuca sativa) AND CHICORY (Cichorium spp.), FRESH OR CHILLED:		
0705.1	-Lettuce:		
0705.11.00	--Cabbage lettuce (head lettuce)	0%	0
0705.19.00	--Other	0%	0
0705.2	-Chicory:		
0705.21.00	--Witloof chicory (Cichorium intybus var. foliosum)	0%	0
0705.29.00	--Other	0%	0
0706	CARROTS, TURNIPS, SALAD BEETROOT, SALSIFY, CELERIAC, RADISHES AND SIMILAR EDIBLE ROOTS, FRESH OR CHILLED:		
0706.10.00	-Carrots and turnips	0%	0
0706.90.00	-Other	0%	0
0707.00.00	CUCUMBERS AND GHERKINS, FRESH OR CHILLED	0%	0
0708	LEGUMINOUS VEGETABLES, SHELLED OR UNSHELLED, FRESH OR CHILLED:		
0708.10.00	-Peas (Pisum sativum)	0%	0
0708.20.00	-Beans (Vigna spp., Phaseolus spp.)	0%	0
0708.90.00	-Other leguminous vegetables	0%	0
0709	OTHER VEGETABLES, FRESH OR CHILLED:		
0709.20.00	-Asparagus	0%	0
0709.30.00	-Aubergines (egg-plants)	0%	0
0709.40.00	-Celery other than celeriac	0%	0
0709.5	-Mushrooms and truffles:		
0709.51.00	--Mushrooms of the genus Agaricus	5%	0
0709.59.00	--Other	5%	0
0709.60.00	-Fruits of the genus Capsicum or of the genus Pimenta	0%	0
0709.70.00	-Spinach, New Zealand spinach and orache spinach (garden spinach)	0%	0
0709.9	-Other:		
0709.91.00	--Globe artichokes	0%	0
0709.92.00	--Olives	0%	0
0709.93.00	--Pumpkins, squash and gourdes (Cucurbita spp.)	0%	0
0709.99.00	--Other	0%	0
0710	VEGETABLES (UNCOOKED OR COOKED BY STEAMING OR BOILING IN WATER), FROZEN:		
0710.10.00	-Potatoes	5%	0
0710.2	-Leguminous vegetables, shelled or unshelled:		
0710.21.00	--Peas (Pisum sativum)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0710.22.00	--Beans (Vigna spp., Phaseolus spp.)	0%	0
0710.29.00	--Other	5%	0
0710.30.00	-Spinach, New Zealand spinach and orache spinach (garden spinach)	5%	0
0710.40.00	-Sweet corn	5%	0
0710.80.00	-Other vegetables	5%	0
0710.90.00	-Mixtures of vegetables	5%	0
0711	VEGETABLES PROVISIONALLY PRESERVED (FOR EXAMPLE, BY SULPHUR DIOXIDE GAS, IN BRINE, IN SULPHUR WATER OR IN OTHER PRESERVATIVE SOLUTIONS), BUT UNSUITABLE IN THAT STATE FOR IMMEDIATE CONSUMPTION:		
0711.20.00	-Olives	0%	0
0711.40.00	-Cucumbers and gherkins	0%	0
0711.5	-Mushrooms and truffles:		
0711.51.00	--Mushrooms of the genus Agaricus	0%	0
0711.59.00	--Other	0%	0
0711.90.00	-Other vegetables; mixtures of vegetables	0%	0
0712	DRIED VEGETABLES, WHOLE, CUT, SLICED, BROKEN OR IN POWDER, BUT NOT FURTHER PREPARED:		
0712.20.00	-Onions	5%	0
0712.3	-Mushrooms, wood ears (Auricularia spp.), jelly fungi (Tremella spp.) and truffles:		
0712.31.00	--Mushrooms of the genus Agaricus	5%	0
0712.32.00	--Wood ears (Auricularia spp.)	5%	0
0712.33.00	--Jelly fungi (Tremella spp.)	5%	0
0712.39.00	--Other	5%	0
0712.90	-Other vegetables; mixtures of vegetables:		
0712.90.10	---Potatoes	5%	0
0712.90.90	---Other	5%	0
0713	DRIED LEGUMINOUS VEGETABLES, SHELLED, WHETHER OR NOT SKINNED OR SPLIT:		
0713.10.00	-Peas (Pisum sativum)	0%	0
0713.20.00	-Chickpeas (garbanzos)	0%	0
0713.3	-Beans (Vigna spp., Phaseolus spp.):		
0713.31.00	--Beans of the species Vigna mungo (L.) Hepper or Vigna radiata (L.) Wilczek	0%	0
0713.32.00	--Small red (Adzuki) beans (Phaseolus or Vigna angularis)	0%	0
0713.33.00	--Kidney beans, including white pea beans (Phaseolus vulgaris)	0%	0
0713.34.00	--Bambara beans (Vigna subterranea or Voandzeia subterranea)	0%	0
0713.35.00	--Cow peas (Vigna unguiculata)	0%	0
0713.39.00	--Other	0%	0
0713.40.00	-Lentils	0%	0
0713.50.00	-Broad beans (Vicia faba var. major) and horse beans (Vicia faba var. equina, Vicia faba var. minor)	0%	0
0713.60.00	-Pigeon peas (Cajanus cajan)	0%	0
0713.90.00	-Other	0%	0
0714	MANIOC, ARROWROOT, SALEP, JERUSALEM ARTICHOKES, SWEET POTATOES AND SIMILAR ROOTS AND TUBERS WITH HIGH STARCH OR INULIN CONTENT, FRESH, CHILLED, FROZEN OR DRIED, WHETHER OR NOT SLICED OR IN THE FORM OF PELLETS; SAGO PITH:		
0714.10	-Manioc (cassava):		
0714.10.10	---Frozen	5%	0
0714.10.90	---Other	0%	0
0714.20	-Sweet potatoes:		
0714.20.10	---Frozen	5%	0
0714.20.90	---Other	0%	0
0714.30	-Yams (Dioscorea spp.):		
0714.30.10	---Frozen	5%	0
0714.30.90	---Other	0%	0
0714.40	-Taro (Colocasia spp.):		
0714.40.10	---Frozen	5%	0
0714.40.90	---Other	0%	0
0714.50	-Yautia (Xanthosoma spp.):		
0714.50.10	---Frozen	5%	0
0714.50.90	---Other	0%	0
0714.90	-Other:		
0714.90.10	---Frozen	5%	0
0714.90.90	---Other	0%	0
08	EDIBLE FRUIT AND NUTS; PEEL OF CITRUS FRUIT OR MELONS		
0801	COCONUTS, BRAZIL NUTS AND CASHEW NUTS, FRESH OR DRIED, WHETHER OR NOT SHELLED OR PEELED:		
0801.1	-Coconuts: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0801.11.00	--Desiccated	0%	0
0801.12.00	--In the inner shell (endocarp)	0%	0
0801.19.00	--Other	0%	0
0801.2	-Brazil nuts:		
0801.21.00	--In shell	0%	0
0801.22.00	--Shelled	0%	0
0801.3	-Cashew nuts:		
0801.31.00	--In shell	0%	0
0801.32.00	--Shelled	0%	0
0802	OTHER NUTS, FRESH OR DRIED, WHETHER OR NOT SHELLED OR PEELED:		
0802.1	-Almonds:		
0802.11.00	--In shell	5%	0
0802.12.00	--Shelled	5%	0
0802.2	-Hazelnuts or filberts (Corylus spp.):		
0802.21.00	--In shell	0%	0
0802.22.00	--Shelled	0%	0
0802.3	-Walnuts:		
0802.31.00	--In shell	0%	0
0802.32.00	--Shelled	0%	0
0802.4	-Chesnuts (Castanea spp.):		
0802.41.00	--In shell	0%	0
0802.42.00	--Shelled	0%	0
0802.5	-Pistachios:		
0802.51.00	--In shell	0%	0
0802.52.00	--Shelled	0%	0
0802.6	-Macadamia nuts:		
0802.61.00	--In shell	0%	0
0802.62.00	--Shelled	0%	0
0802.70.00	-Kola nuts (Cola spp.)	0%	0
0802.80.00	-Areca nuts	0%	0
0802.90.00	-Other	0%	0
0803	BANANAS, INCLUDING PLANTAINS, FRESH OR DRIED:		
0803.10.00	-Plantains	0%	0
0803.90.00	-Other	0%	0
0804	DATES, FIGS, PINEAPPLES, AVOCADOS, GUAVAS, MANGOES AND MANGOSTEENS, FRESH OR DRIED:		
0804.10.00	-Dates	0%	0
0804.20.00	-Figs	0%	0
0804.30.00	-Pineapples	0%	0
0804.40.00	-Avocados	0%	0
0804.50.00	-Guavas, mangoes and mangosteens	0%	0
0805	CITRUS FRUIT, FRESH OR DRIED:		
0805.10.00	-Oranges	0%	0
0805.20.00	-Mandarins (including tangerines and satsumas); clementines, wilkings and similar citrus hybrids	0%	0
0805.40.00	-Grapefruit, including pomelos	0%	0
0805.50.00	-Lemons (Citrus limon, Citrus limonum) and limes (Citrus aurantifolia, Citrus latifolia)	0%	0
0805.90.00	-Other	0%	0
0806	GRAPES, FRESH OR DRIED:		
0806.10.00	-Fresh	5%	0
0806.20.00	-Dried	5%	0
0807	MELONS (INCLUDING WATERMELONS) AND PAWPAWS (PAPAYAS), FRESH:		
0807.1	-Melons (including watermelons):		
0807.11.00	--Watermelons	0%	0
0807.19.00	--Other	0%	0
0807.20.00	-Pawpaws (papayas)	0%	0
0808	APPLES, PEARS AND QUINCES, FRESH:		
0808.10.00	-Apples	0%	0
0808.30.00	-Pears	0%	0
0808.40.00	-Quinces	0%	0
0809	APRICOTS, CHERRIES, PEACHES (INCLUDING NECTARINES), PLUMS AND SLOES, FRESH:		
0809.10.00	-Apricots	0%	0
0809.2	-Cherries:		
0809.21.00	--Sour cherries (Prunus cerasus)	0%	0
0809.29.00	--Other	0%	0
0809.30.00	-Peaches, including nectarines	0%	0
0809.40.00	-Plums and sloes	0%	0
0810	OTHER FRUIT, FRESH:		
0810.10.00	-Strawberries	0%	0
0810.20.00	-Raspberries, blackberries, mulberries and loganberries	0%	0
0810.30.00	-Black, white or red currants and gooseberries	0%	0
0810.40.00	-Cranberries, bilberries and other fruits of the genus Vaccinium	0%	0
0810.50.00	-Kiwifruit	0%	0
0810.60.00	-Durians	0%	0
0810.70.00	-Persimmons	0%	0
0810.90.00	-Other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0811	FRUIT AND NUTS, UNCOOKED OR COOKED BY STEAMING OR BOILING IN WATER, FROZEN,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0811.10.00	-Strawberries	4%	0
0811.20.00	-Raspberries, blackberries, mulberries, loganberries, black, white or red currants and gooseberries	0%	0
0811.90.00	-Other	0%	0
0812	FRUIT AND NUTS, PROVISIONALLY PRESERVED (FOR EXAMPLE, BY SULPHUR DIOXIDE GAS, IN BRINE, IN SULPHUR WATER OR IN OTHER PRESERVATIVE SOLUTIONS), BUT UNSUITABLE IN THAT STATE FOR IMMEDIATE CONSUMPTION:		
0812.10.00	-Cherries	0%	0
0812.90.00	-Other	0%	0
0813	FRUIT, DRIED, OTHER THAN THAT OF 0801 TO 0806; MIXTURES OF NUTS OR DRIED FRUITS OF THIS CHAPTER:		
0813.10.00	-Apricots	5%	0
0813.20.00	-Prunes	5%	0
0813.30.00	-Apples	5%	0
0813.40.00	-Other fruit	5%	0
0813.50.00	-Mixtures of nuts or dried fruits of this Chapter	5%	0
0814.00.00	PEEL OF CITRUS FRUIT OR MELONS (INCLUDING WATERMELONS), FRESH, FROZEN, DRIED OR PROVISIONALLY PRESERVED IN BRINE, IN SULPHUR WATER OR IN OTHER PRESERVATIVE SOLUTIONS	0%	0
09	COFFEE, TEA, MATE AND SPICES		
0901	COFFEE, WHETHER OR NOT ROASTED OR DECAFFEINATED; COFFEE HUSKS AND SKINS; COFFEE SUBSTITUTES CONTAINING COFFEE IN ANY PROPORTION:		
0901.1	-Coffee, not roasted:		
0901.11.00	--Not decaffeinated	0%	0
0901.12.00	--Decaffeinated	0%	0
0901.2	-Coffee, roasted:		
0901.21.00	--Not decaffeinated	0%	0
0901.22.00	--Decaffeinated	0%	0
0901.90.00	-Other	0%	0
0902	TEA, WHETHER OR NOT FLAVOURED:		
0902.10.00	-Green tea (not fermented) in immediate packings of a content not exceeding 3 kg	0%	0
0902.20.00	-Other green tea (not fermented)	0%	0
0902.30.00	-Black tea (fermented) and partly fermented tea, in immediate packings of a content not exceeding 3 kg	0%	0
0902.40.00	-Other black tea (fermented) and other partly fermented tea	0%	0
0903.00.00	MATE	0%	0
0904	PEPPER OF THE GENUS PIPER; DRIED OR CRUSHED OR GROUND FRUITS OF THE GENUS CAPSICUM OR OF THE GENUS PIMENTA:		
0904.1	-Pepper:		
0904.11.00	--Neither crushed nor ground	0%	0
0904.12.00	--Crushed or ground	0%	0
0904.2	-Fruits of the genus Capsicum or of the genus Pimenta:		
0904.21.00	--Dried, neither crushed nor ground	0%	0
0904.22.00	--Crushed or ground	0%	0
0905	VANILLA:		
0905.10.00	-Neither crushed nor ground	0%	0
0905.20.00	-Crushed or ground	0%	0
0906	CINNAMON AND CINNAMON-TREE FLOWERS:		
0906.1	-Neither crushed nor ground		
0906.11.00	--Cinnamon (Cinnamomum zeylanicum Blume)	0%	0
0906.19.00	--Other	0%	0
0906.20.00	-Crushed or ground	0%	0
0907	CLOVES (WHOLE FRUIT, CLOVES AND STEMS):		
0907.10.00	-Neither crushed nor ground	0%	0
0907.20.00	-Crushed or ground	0%	0
0908	NUTMEG, MACE AND CARDAMOMS:		
0908.1	-Nutmeg:		
0908.11.00	--Neither crushed nor ground	0%	0
0908.12.00	--Crushed or ground	0%	0
0908.2	-Mace:		
0908.21.00	--Neither crushed nor ground	0%	0
0908.22.00	--Crushed or ground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0908.3	-Cardamoms:		
0908.31.00	--Neither crushed nor ground	0%	0
0908.32.00	--Crushed or ground	0%	0
0909	SEEDS OF ANISE, BADIAN, FENNEL, CORIANDER, CUMIN OR CARAWAY; JUNIPER BERRIES:		
0909.2	-Seeds of coriander:		
0909.21.00	--Neither crushed nor ground	0%	0
0909.22.00	--Crushed or ground	0%	0
0909.3	-Seeds of cumin:		
0909.31.00	--Neither crushed nor ground	0%	0
0909.32.00	--Crushed or ground	0%	0
0909.6	-Seeds of anise, badian, caraway or fennel; juniper berries:		
0909.61.00	--Neither crushed nor ground	0%	0
0909.62.00	--Crushed or ground	0%	0
0910	GINGER, SAFFRON, TURMERIC (CURCUMA), THYME, BAY LEAVES, CURRY AND OTHER SPICES:		
0910.1	-Ginger:		
0910.11.00	--Neither crushed nor ground	0%	0
0910.12.00	--Crushed or ground	0%	0
0910.20.00	-Saffron	0%	0
0910.30.00	-Turmeric (curcuma)	0%	0
0910.9	-Other spices:		
0910.91.00	--Mixtures referred to in Note 1(b) to this Chapter	0%	0
0910.99.00	--Other	0%	0
10	CEREALS		
1001	WHEAT AND MESLIN:		
1001.1	-Durum wheat:		
1001.11.00	--Seed	0%	0
1001.19.00	--Other	0%	0
1001.9	-Other:		
1001.91.00	--Seed	0%	0
1001.99.00	--Other	0%	0
1002	RYE:		
1002.10.00	-Seed	0%	0
1002.90.00	-Other	0%	0
1003	BARLEY:		
1003.10.00	-Seed	0%	0
1003.90.00	-Other	0%	0
1004	OATS:		
1004.10.00	-Seed	0%	0
1004.90.00	-Other	0%	0
1005	MAIZE (CORN):		
1005.10.00	-Seed	0%	0
1005.90.00	-Other	0%	0
1006	RICE:		
1006.10.00	-Rice in the husk (paddy or rough)	0%	0
1006.20.00	-Husked (brown) rice	0%	0
1006.30.00	-Semi-milled or wholly milled rice, whether or not polished or glazed	0%	0
1006.40.00	-Broken rice	0%	0
1007	GRAIN SORGHUM:		
1007.10.00	-Seed	0%	0
1007.90.00	-Other	0%	0
1008	BUCKWHEAT, MILLET AND CANARY SEEDS; OTHER CEREALS:		
1008.10.00	-Buckwheat	0%	0
1008.2	-Millet:		
1008.21.00	--Seed	0%	0
1008.29.00	--Other	0%	0
1008.30.00	-Canary seeds	0%	0
1008.40.00	-Fonio (Digitaria spp.)	0%	0
1008.50.00	-Quinoa (Chenopodium quinoa)	0%	0
1008.60.00	-Triticale	0%	0
1008.90.00	-Other cereals	0%	0
11	PRODUCTS OF THE MILLING INDUSTRY; MALT; STARCHES; INULIN; WHEAT GLUTEN		
1101.00.00	WHEAT OR MESLIN FLOUR	0%	0
1102	CEREAL FLOURS OTHER THAN OF WHEAT OR MESLIN:		
1102.20.00	-Maize (corn) flour	0%	0
1102.90.00	-Other	0%	0
1103	CEREAL GROATS, MEAL AND PELLETS:		
1103.1	-Groats and meal:		
1103.11.00	--Of wheat	0%	0
1103.13.00	--Of maize (corn)	0%	0
1103.19.00	--Of other cereals	0%	0
1103.20.00	-Pellets	0%	0
1104	CEREAL GRAINS OTHERWISE WORKED (FOR EXAMPLE, HULLED, ROLLED, FLAKED, PEARLED, SLICED OR KIBBLED), EXCEPT RICE OF 1006; GERM OF CEREALS, WHOLE, ROLLED, FLAKED OR GROUND:		
1104.1	-Rolled or flaked grains:		
1104.12.00	--Of oats	0%	0
1104.19.00	--Of other cereals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1104.2	-Other worked grains (for example, hulled, pearled, sliced or kibbled):		
1104.22.00	--Of oats	0%	0
1104.23.00	--Of maize (corn)	0%	0
1104.29.00	--Of other cereals	0%	0
1104.30.00	-Germ of cereals, whole, rolled, flaked or ground	0%	0
1105	FLOUR, MEAL, POWDER, FLAKES, GRANULES AND PELLETS OF POTATOES:		
1105.10.00	-Flour, meal and powder	5%	0
1105.20.00	-Flakes, granules and pellets	5%	0
1106	FLOUR, MEAL AND POWDER OF THE DRIED LEGUMINOUS VEGETABLES OF 0713, OF SAGO OR OF ROOTS OR TUBERS OF HEADING 0714 OR OF THE PRODUCTS OF CHAPTER 8:		
1106.10.00	-Of the dried leguminous vegetables of 0713	0%	0
1106.20.00	-Of sago or of roots or tubers of 0714	0%	0
1106.30.00	-Of the products of Chapter 8	0%	0
1107	MALT, WHETHER OR NOT ROASTED:		
1107.10.00	-Not roasted	0%	0
1107.20.00	-Roasted	0%	0
1108	STARCHES; INULIN:		
1108.1	-Starches:		
1108.11.00	--Wheat starch	0%	0
1108.12.00	--Maize (corn) starch	0%	0
1108.13.00	--Potato starch	5%	0
1108.14.00	--Manioc (cassava) starch	0%	0
1108.19.00	--Other starches	5%	0
1108.20.00	-Inulin	0%	0
1109.00.00	WHEAT GLUTEN, WHETHER OR NOT DRIED	0%	0
12	OIL SEEDS AND OLEAGINOUS FRUITS; MISCELLANEOUS GRAINS, SEEDS AND FRUIT; INDUSTRIAL OR MEDICINAL PLANTS; STRAW AND FODDER		
1201	Soya-beans, whether or not broken:		
1201.10.00	-Seed	0%	0
1201.90.00	-Other	0%	0
1202	GROUND-NUTS, NOT ROASTED OR OTHERWISE COOKED, WHETHER OR NOT SHELLED OR BROKEN:		
1202.30.00	-Seed	5%	0
1202.4	-Other:		
1202.41.00	--In shell	5%	0
1202.42.00	--Shelled, whether or not broken	5%	0
1203.00.00	COPRA	0%	0
1204.00.00	LINSEED, WHETHER OR NOT BROKEN	0%	0
1205	RAPE OR COLZA SEEDS, WHETHER OR NOT BROKEN:		
1205.10.00	-Low erucic acid rape or colza seeds	0%	0
1205.90.00	-Other	0%	0
1206.00.00	SUNFLOWER SEEDS, WHETHER OR NOT BROKEN	0%	0
1207	OTHER OIL SEEDS AND OLEAGINOUS FRUITS, WHETHER OR NOT BROKEN:		
1207.10.00	-Palm nuts and kernels	0%	0
1207.2	-Cotton seeds:		
1207.21.00	--Seed	0%	0
1207.29.00	--Other	0%	0
1207.30.00	-Castor oil seeds	0%	0
1207.40.00	-Sesamum seeds	0%	0
1207.50.00	-Mustard seeds	0%	0
1207.60.00	-Safflower (Carthamus tinctorius) seeds	0%	0
1207.70.00	-Melon seeds	0%	0
1207.9	-Other:		
1207.91.00	--Poppy seeds	0%	0
1207.99.00	--Other	0%	0
1208	FLOURS AND MEALS OF OIL SEEDS OR OLEAGINOUS FRUITS, OTHER THAN THOSE OF MUSTARD:		
1208.10.00	-Of soya beans	0%	0
1208.90.00	-Other	0%	0
1209	SEEDS, FRUIT AND SPORES, OF A KIND USED FOR SOWING:		
1209.10.00	-Sugar beet seeds	0%	0
1209.2	-Seeds of forage plants:		
1209.21.00	--Lucerne (alfalfa) seeds	0%	0
1209.22.00	--Clover (Trifolium spp.) seeds	0%	0
1209.23.00	--Fescue seeds	0%	0
1209.24.00	--Kentucky blue grass (Poa pratensis L.) seeds	0%	0
1209.25.00	--Rye grass (Lolium multiflorum Lam., Lolium perenne L.) seeds	0%	0
1209.29.00	--Other	0%	0
1209.30.00	-Seeds of herbaceous plants cultivated principally for their flowers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1209.9	-Other:		
1209.91.00	--Vegetable seeds	0%	0
1209.99.00	--Other	0%	0
1210	HOP CONES, FRESH OR DRIED, WHETHER OR NOT GROUND, POWDERED OR IN THE FORM OF PELLETS; LUPULIN:		
1210.10.00	-Hop cones, neither ground nor powdered nor in the form of pellets	5%	0
1210.20.00	-Hop cones, ground, powdered or in the form of pellets; lupulin	5%	0
1211	PLANTS AND PARTS OF PLANTS (INCLUDING SEEDS AND FRUITS), OF A KIND USED PRIMARILY IN PERFUMERY, IN PHARMACY OR FOR INSECTICIDAL, FUNGICIDAL OR SIMILAR PURPOSES, FRESH OR DRIED, WHETHER OR NOT CUT, CRUSHED OR POWDERED:		
1211.20.00	-Ginseng roots	0%	0
1211.30.00	-Coca leaf	0%	0
1211.40.00	-Poppy straw	0%	0
1211.90.00	-Other	0%	0
1212	LOCUST BEANS, SEAWEEDS AND OTHER ALGAE, SUGAR BEET AND SUGAR CANE, FRESH, CHILLED, FROZEN OR DRIED, WHETHER OR NOT GROUND; FRUIT STONES AND KERNELS AND OTHER VEGETABLE PRODUCTS (INCLUDING UNROASTED CHICORY ROOTS OF THE VARIETY CICHORIUM INTYBUS SATIVUM) OF A KIND USED PRIMARILY FOR HUMAN CONSUMPTION,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1212.2	-Seaweeds and other algae:		
1212.21	--Fit for human consumption:		
1212.21.10	---Frozen	5%	0
1212.21.90	---Other	0%	0
1212.29	--Other:		
1212.29.10	---Frozen	5%	0
1212.29.90	---Other	0%	0
1212.9	-Other:		
1212.91.00	--Sugar beet	0%	0
1212.92.00	--Locust beans (carob)	0%	0
1212.93.00	--Sugar cane	0%	0
1212.94.00	--Chicory roots	0%	0
1212.99.00	--Other	0%	0
1213.00.00	CEREAL STRAW AND HUSKS, UNPREPARED, WHETHER OR NOT CHOPPED, GROUND, PRESSED OR IN THE FORM OF PELLETS	0%	0
1214	SWEDES, MANGOLDS, FODDER ROOTS, HAY, LUCERNE (ALFALFA), CLOVER, SAINFOIN, FORAGE KALE, LUPINES, VETCHES AND SIMILAR FORAGE PRODUCTS, WHETHER OR NOT IN THE FORM OF PELLETS:		
1214.10.00	-Lucerne (alfalfa) meal and pellets	0%	0
1214.90.00	-Other	0%	0
13	LAC; GUMS, RESINS AND OTHER VEGETABLE SAPS AND EXTRACTS		
1301	LAC; NATURAL GUMS, RESINS, GUM-RESINS AND OLEORESINS (FOR EXAMPLE, BALSAMS):		
1301.20.00	-Gum Arabic	0%	0
1301.90.00	-Other	0%	0
1302	VEGETABLE SAPS AND EXTRACTS; PECTIC SUBSTANCES, PECTINATES AND PECTATES; AGAR-AGAR AND OTHER MUCILAGES AND THICKENERS, WHETHER OR NOT MODIFIED, DERIVED FROM VEGETABLE PRODUCTS:		
1302.1	-Vegetable saps and extracts:		
1302.11.00	--Opium	0%	0
1302.12.00	--Of liquorice	0%	0
1302.13.00	--Of hops	5%	0
1302.19	--Other:		
1302.19.10	---Oleoresin of ginger (gingerin)	5%	0
1302.19.90	---Other	0%	0
1302.20.00	-Pectic substances, pectinates and pectates	0%	0
1302.3	-Mucilages and thickeners, whether or not modified, derived from vegetable products:		
1302.31.00	--Agar-agar	0%	0
1302.32.00	--Mucilages and thickeners, whether or not modified, derived from locust beans, locust bean seeds or guar seed	0%	0
1302.39.00	--Other	0%	0
14	VEGETABLE PLAITING MATERIALS; VEGETABLE PRODUCT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1401	VEGETABLE MATERIALS OF A KIND USED PRIMARILY FOR PLAITING (FOR EXAMPLE, BAMBOOS, RATTANS, REEDS, RUSHES, OSIER, RAFFIA, CLEANED, BLEACHED OR DYED CEREAL STRAW, AND LIME BARK):		
1401.10.00	-Bamboos	0%	0
1401.20.00	-Rattans	0%	0
1401.90.00	-Other	0%	0
1404	VEGETABLE PRODUCT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1404.20.00	-Cotton linters	0%	0
1404.90.00	-Other	0%	0
15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CLEAVAGE PRODUCTS; PREPARED EDIBLE FATS; ANIMAL OR VEGETABLE WAXES		
1501	PIG FAT (INCLUDING LARD) AND POULTRY FAT, OTHER THAN THAT OF 02909 0R 1503.00.00:		
1501.10.00	-Lard	0%	0
1501.20.00	-Other pig fat	0%	0
1501.90.00	-Other	0%	0
1502	Fats of bovine animals, sheep or goats, other than those of 1503.00.00:		
1502.10.00	-Tallow	0%	0
1502.90.00	-Other	0%	0
1503.00.00	LARD STEARIN, LARD OIL, OLEOSTEARIN, OLEO-OIL AND TALLOW OIL, NOT EMULSIFIED OR MIXED OR OTHERWISE PREPARED	0%	0
1504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OF FISH OR MARINE MAMMAL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1504.10.00	-Fish-liver oils and their fractions	0%	0
1504.20.00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of fish, other than liver oils	0%	0
1504.30.00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of marine mammals	0%	0
1505.00.00	WOOL GREASE AND FATTY SUBSTANCES DERIVED THEREFROM (INCLUDING LANOLIN)	0%	0
1506.00.00	OTHER ANIMAL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0%	0
1507	SOYA-BEAN OIL AND ITS FRACTION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1507.10.00	-Crude oil, whether or not degummed	5%	0
1507.90.00	-Other	5%	0
1508	GROUND-NUT OIL AND ITS FRACTION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1508.10.00	-Crude oil	5%	0
1508.90.00	-Other	5%	0
1509	OLIVE OIL AND ITS FRACTION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1509.10.00	-Virgin	0%	0
1509.90.00	-Other	0%	0
1510.00.00	OTHER OILS AND THEIR FRACTIONS, OBTAINED SOLELY FROM OLIVE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INCLUDING BLENDS OF THESE OILS OR FRACTIONS WITH OILS OR FRACTIONS OF 1509	0%	0
1511	PALM OIL AND ITS FRACTION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1511.10.00	-Crude oil	0%	0
1511.90.00	-Other	0%	0
1512	SUNFLOWER-SEED, SAFFLOWER OR COTTON-SEED OIL AND FRACTIONS THEREOF,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1512.1	-Sunflower-seed or safflower oil and fractions thereof:		
1512.11.00	--Crude oil	5%	0
1512.19.00	--Other	5%	0
1512.2	-Cotton-seed oil and its fractions:		
1512.21.00	--Crude oil, whether or not gossypol has been removed	5%	0
1512.29.00	--Other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1513	COCONUT (COPRA), PALM KERNEL OR BABASSU OIL AND FRACTIONS THEREOF,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1513.1	-Coconut (copra) oil and its fractions:		
1513.11.00	--Crude oil	0%	0
1513.19.00	--Other	0%	0
1513.2	-Palm kernel or babassu oil and fractions thereof:		
1513.21.00	--Crude oil	0%	0
1513.29.00	--Other	0%	0
1514	RAPE, COLZA OR MUSTARD OIL AND FRACTIONS THEREOF,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1514.1	-Low erucic acid rape or colza oil and its fractions:		
1514.11.00	--Crude oil	5%	0
1514.19.00	--Other	5%	0
1514.9	-Other:		
1514.91.00	--Crude oil	5%	0
1514.99.00	--Other	5%	0
1515	OTHER FIXED VEGETABLE FATS AND OILS (INCLUDING JOJOBA OIL) AND THEIR FRACTION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1515.1	-Linseed oil and its fractions:		
1515.11.00	--Crude oil	5%	0
1515.19.00	--Other	5%	0
1515.2	-Maize (corn) oil and its fractions:		
1515.21.00	--Crude oil	0%	0
1515.29.00	--Other	5%	0
1515.30.00	-Castor oil and its fractions	0%	0
1515.50.00	-Sesame oil and its fractions	0%	0
1515.90.00	-Other	0%	0
1516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PARTLY OR WHOLLY HYDROGENATED, INTER-ESTERIFIED, RE-ESTERIFIED OR ELAIDINISED,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FURTHER PREPARED:		
1516.10.00	-Animal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0%	0
1516.20.00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1517	MARGARINE; EDIBLE MIXTURES OR PREPARATIONS OF ANIMAL OR VEGETABLE FATS OR OILS OR OF FRACTIONS OF DIFFERENT FATS OR OILS OF THIS CHAPTER, OTHER THAN EDIBLE FATS OR OILS OR THEIR FRACTIONS OF 1516:		
1517.10.00	-Margarine, excluding liquid margarine	5%	0
1517.90.00	-Other	5%	0
1518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BOILED, OXIDISED, DEHYDRATED, SULPHURISED, BLOWN, POLYMERISED BY HEAT IN VACUUM OR IN INERT GAS OR OTHERWISE CHEMICALLY MODIFIED, EXCLUDING THOSE OF 1516; INEDIBLE MXITURES OR PREPARATIONS OF ANIMAL OR VEGETABLE FATS OR OILS OR OF FRACTIONS OF DIFFERENT FATS OR OILS OF THIS CHAPTER,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1518.00.10	---Epoxidised vegetable oils	5%	0
1518.00.90	---Other	0%	0
1520.00.00	GLYCEROL, CRUDE; GLYCEROL WATERS AND GLYCEROL LYES	0%	0
1521	VEGETABLE WAXES (OTHER THAN TRIGLYCERIDES), BEESWAX, OTHER INSECT WAXES AND SPERMACETI, WHETHER OR NOT REFINED OR COLOURED:		
1521.10.00	-Vegetable waxes	0%	0
1521.90.00	-Other	0%	0
1522.00.00	DEGRAS; RESIDUES RESULTING FROM THE TREATMENT OF FATTY SUBSTANCES OR ANIMAL OR VEGETABLE WAXES	0%	0
16	PREPARATIONS OF MEAT, OF FISH OR OF CRUSTACEANS, MOLLUSCS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S		
1601.00.00	SAUSAGES AND SIMILAR PRODUCTS, OF MEAT, MEAT OFFAL OR BLOOD; FOOD PREPARATIONS BASED ON THESE PRODUCTS	5%	0
1602	OTHER PREPARED OR PRESERVED MEAT, MEAT OFFAL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OR BLOOD:		
1602.10.00	-Homogenised preparations	5%	0
1602.20.00	-Of liver of any animal	5%	0
1602.3	-Of poultry of 0105:		
1602.31.00	--Of turkeys	0%	0
1602.32.00	--Of fowls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0%	0
1602.39.00	--Other	0%	0
1602.4	-Of swine:		
1602.41.00	--Hams and cuts thereof	5%	0
1602.42.00	--Shoulders and cuts thereof	5%	0
1602.49.00	--Other, including mixtures	5%	0
1602.50.00	-Of bovine animals	5%	0
1602.90.00	-Other, including preparations of blood of any animal	5%	0
1603.00.00	EXTRACTS AND JUICES OF MEAT, FISH OR CRUSTACEANS, MOLLUSCS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S	0%	0
1604	PREPARED OR PRESERVED FISH; CAVIAR AND CAVIAR SUBSTITUTES PREPARED FROM FISH EGGS:		
1604.1	-Fish, whole or in pieces, but not minced:		
1604.11.00	--Salmon	0%	0
1604.12.00	--Herrings	0%	0
1604.13.00	--Sardines, sardinella and brisling or sprats	0%	0
1604.14.00	--Tunas, skipjack and bonito (Sarda spp.)	5%	0
1604.15.00	--Mackerel	0%	0
1604.16.00	--Anchovies	0%	0
1604.17.00	--Eels	0%	0
1604.19.00	--Other	0%	0
1604.20.00	-Other prepared or preserved fish	0%	0
1604.3	-Caviar and caviar substitutes:		
1604.31.00	--Caviar	0%	0
1604.32.00	--Caviar substitutes	0%	0
1605	CRUSTACEANS, MOLLUSCS AND OTHER AQUATIC INVERTEBRATES, PREPARED OR PRESERVED:		
1605.10.00	-Crab	0%	0
1605.2	-Shrimps and prawns:		
1605.21.00	--Not in airtight container	0%	0
1605.29.00	--Other	0%	0
1605.30.00	-Lobster	0%	0
1605.40.00	-Other crustaceans	0%	0
1605.5	-Molluscs:		
1605.51.00	--Oysters	0%	0
1605.52.00	--Scallops, including queen scallops	0%	0
1605.53.00	--Mussels	0%	0
1605.54.00	--Cuttle fish and squid	0%	0
1605.55.00	--Octopus	0%	0
1605.56.00	--Clams, cockles and arkshells	0%	0
1605.57.00	--Abalone	0%	0
1605.58.00	--Snails, other than sea snails	0%	0
1605.59.00	--Other	0%	0
1605.6	-Other aquatic invertebrates:		
1605.61.00	--Sea cucumbers	0%	0
1605.62.00	--Sea urchins	0%	0
1605.63.00	--Jellyfish	0%	0
1605.69.00	--Other	0%	0
1701	CANE OR BEET SUGAR AND CHEMICALLY PURE SUCROSE, IN SOLID FORM:		
1701.1	-Raw sugar not containing added flavouring or colouring matter:		
1701.12.00	--Beet sugar	0%	0
1701.13.00	--Cane sugar specificed in Subheading Note 2 to this Chapter	0%	0
1701.14.00	--Other cane sugar	0%	0
1701.9	-Other:		
1701.91.00	--Containing added flavouring or colouring matter	0%	0
1701.99.00	--Other	0%	0
1702	OTHER SUGARS, INCLUDING CHEMICALLY PURE LACTOSE, MALTOSE, GLUCOSE AND FRUCTOSE, IN SOLID FORM; SUGAR SYRUPS NOT CONTAINING ADDED FLAVOURING OR COLOURING MATTER; ARTIFICIAL HONEY, WHETHER OR NOT MIXED WITH NATURAL HONEY; CARAMEL:		
1702.1	-Lactose and lactose syrup:		
1702.11.00	--Containing by weight 99% or more lactose, expressed as anhydrous lactose, calculated on the dry matter	0%	0
1702.19.00	--Other	0%	0
1702.20.00	-Maple sugar and maple syrup	5%	0
1702.30.00	-Glucose and glucose syrup, not containing fructose or containing in the dry state less than 20% by weight of fructose	4%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1702.40.00	-Glucose and glucose syrup, containing in the dry state at least 20% but less than 50% by weight of fructose, excluding invert sugar	4%	0
1702.50.00	-Chemically pure fructose	0%	0
1702.60.00	-Other fructose and fructose syrup, containing in the dry state more than 50% by weight of fructose, excluding invert sugar	5%	0
1702.90	-Other, including invert sugar and other sugar and sugar syrup blends containing in the dry state 50% by weight of fructose:		
1702.90.10	---Goods, as follows: (a) liquid sugars and invert sugars derived from sugar cane or sugar beet; (b) golden syrup	0%	0
1702.90.90	---Other	5%	0
1703	MOLASSES RESULTING FROM THE EXTRACTION OR REFINING OF SUGAR:		
1703.10.00	-Cane molasses	0%	0
1703.90.00	-Other	0%	0
1704	SUGAR CONFECTIONERY (INCLUDING WHITE CHOCOLATE), NOT CONTAINING COCOA:		
1704.10.00	-Chewing gum, whether or not sugar-coated	5%	0
1704.90.00	-Other	5%	0
18	COCOA AND COCOA PREPARATIONS		
1801.00.00	COCOA BEANS, WHOLE OR BROKEN, RAW OR ROASTED	0%	0
1802.00.00	COCOA SHELLS, HUSKS, SKINS AND OTHER COCOA WASTE	0%	0
1803	COCOA PASTE, WHETHER OR NOT DEFATTED:		
1803.10.00	-Not defatted	0%	0
1803.20.00	-Wholly or partly defatted	0%	0
1804.00.00	COCOA BUTTER, FAT AND OIL	0%	0
1805.00.00	COCOA POWDE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0%	0
1806	CHOCOLATE AND OTHER FOOD PREPARATIONS CONTAINING COCOA:		
1806.10.00	-Cocoa powde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5%	0
1806.20.00	-Other preparations in blocks, slabs or bars weighing more than 2 kg or in liquid, paste, powder, granular or other bulk form in containers or immediate packings, of a content exceeding 2 kg	5%	0
1806.3	-Other, in blocks, slabs or bars:		
1806.31.00	--Filled	5%	0
1806.32.00	--Not filled	5%	0
1806.90.00	-Other	5%	0
19	PREPARATIONS OF CEREALS, FLOUR, STARCH OR MILK; PASTRYCOOKS' PRODUCTS		
1901	MALT EXTRACT; FOOD PREPARATIONS OF FLOUR, GROATS, MEAL, STARCH OR MALT EXTRACT, NOT CONTAINING COCOA OR CONTAINING LESS THAN 40% BY WEIGHT OF COCOA CALCULATED ON A TOTALLY DEFATTED BASI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0401 TO 0404, NOT CONTAINING COCOA OR CONTAINING LESS THAN 5% BY WEIGHT OF COCOA CALCULATED ON A TOTALLY DEFATTED BASI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1901.10.00	-Preparations for infant use, put up for retail sale	0%	0
1901.20.00	-Mixes and doughs for the preparation of bakers' wares of 1905	5%	0
1901.90.00	-Other	5%	0
1902	PASTA, WHETHER OR NOT COOKED OR STUFFED (WITH MEAT OR OTHER SUBSTANCES) OR OTHERWISE PREPARED, SUCH AS SPAGHETTI, MACARONI, NOODLES, LASAGNE, GNOCCHI, RAVIOLI, CANNELLONI; COUSCOUS, WHETHER OR NOT PREPARED:		
1902.1	-Uncooked pasta, not stuffed or otherwise prepared:		
1902.11.00	--Containing eggs	5%	0
1902.19.00	--Other	5%	0
1902.20.00	-Stuffed pasta, whether or not cooked or otherwise prepared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1902.30.00	-Other pasta	5%	0
1902.40.00	-Couscous	0%	0
1903.00.00	TAPIOCA AND SUBSTITUTES THEREFOR PREPARED FROM STARCH, IN THE FORM OF FLAKES, GRAINS, PEARLS, SIFTINGS OR IN SIMILAR FORMS	0%	0
1904	PREPARED FOODS OBTAINED BY THE SWELLING OR ROASTING OF CEREALS OR CEREAL PRODUCTS (FOR EXAMPLE, CORN FLAKES); CEREALS (OTHER THAN MAIZE (CORN)) IN GRAIN FORM OR IN THE FORM OF FLAKES OR OTHER WORKED GRAINS (EXCEPT FLOUR AND MEAL), PRE-COOKED, OR OTHERWISE PREPARED,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1904.10.00	-Prepared foods obtained by the swelling or roasting of cereals or cereal products	5%	0
1904.20	-Prepared foods obtained from unroasted cereal flakes or from mixtures of unroasted cereal flakes and roasted cereal flakes or swelled cereals:		
1904.20.10	---"Muesli" type preparations	5%	0
1904.20.90	---Other	5%	0
1904.30.00	-Bulgur wheat	4%	0
1904.90.00	-Other	4%	0
1905	BREAD, PASTRY, CAKES, BISCUITS AND OTHER BAKERS' WARES, WHETHER OR NOT CONTAINING COCOA; COMMUNION WAFERS, EMPTY CACHETS OF A KIND SUITABLE FOR PHARMACEUTICAL USE, SEALING WAFERS, RICE PAPER AND SIMILAR PRODUCTS:		
1905.10.00	-Crispbread	0%	0
1905.20.00	-Gingerbread and the like	5%	0
1905.3	-Sweet biscuits; waffles and wafers:		
1905.31.00	--Sweet biscuits	5%	0
1905.32.00	--Waffles and wafers	5%	0
1905.40.00	-Rusks, toasted bread and similar toasted products	5%	0
1905.90.00	-Other	5%	0
20	PREPARATIONS OF VEGETABLES, FRUIT, NUTS OR OTHER PARTS OF PLANTS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2001	VEGETABLES, FRUIT, NUTS AND OTHER EDIBLE PARTS OF PLANTS, PREPARED OR PRESERVED BY VINEGAR OR ACETIC ACID:		
2001.10.00	-Cucumbers and gherkins	5%	0
2001.90	-Other:		
2001.90.10	---Onions	5%	0
2001.90.90	---Other	5%	0
2002	TOMATOES PREPARED OR PRESERVED OTHERWISE THAN BY VINEGAR OR ACETIC ACID:		
2002.10.00	-Tomatoes, whole or in pieces	5%	0
2002.90.00	-Other	5%	0
2003	MUSHROOMS AND TRUFFLES, PREPARED OR PRESERVED OTHERWISE THAN BY VINEGAR OR ACETIC ACID:		
2003.10.00	-Mushrooms of the genus Agaricus	5%	0
2003.20.00	-Truffles	0%	0
2003.90	-Other:		
2003.90.10	---Truffles	0%	0
2003.90.90	---Other	5%	0
2004	OTHER VEGETABLES PREPARED OR PRESERVED OTHERWISE THAN BY VINEGAR OR ACETIC ACID, FROZEN, OTHER THAN PRODUCTS OF 2006:		
2004.10.00	-Potatoes	5%	0
2004.90.00	-Other vegetables and mixtures of vegetables	5%	0
2005	OTHER VEGETABLES PREPARED OR PRESERVED OTHERWISE THAN BY VINEGAR OR ACETIC ACID, NOT FROZEN, OTHER THAN PRODUCTS OF 2006:		
2005.10.00	-Homogenised vegetables	5%	0
2005.20.00	-Potatoes	0%	0
2005.40.00	-Peas (Pisum sativum)	5%	0
2005.5	-Beans (Vigna spp., Phaseolus spp.):		
2005.51.00	--Beans, shelled	0%	0
2005.59.00	--Other	5%	0
2005.60.00	-Asparagus	5%	0
2005.70.00	-Olives	5%	0
2005.80.00	-Sweet corn (Zea mays var. saccharata)	5%	0
2005.9	-Other vegetables and mixtures of vegetables:		
2005.91.00	--Bamboo shoots	5%	0
2005.99.00	--Other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2006	VEGETABLES, FRUIT, NUTS, FRUIT-PEEL AND OTHER PARTS OF PLANTS, PRESERVED BY SUGAR (DRAINED, GLACE OR CRYSTALLISED):		
2006.00.10	---Vegetables, as follows: (a) beans; (b) olives; (c) sweet corn	0%	0
2006.00.20	---Vegetables, as follows: (a) peas (Pisum sativum); (b) asparagus	5%	0
2006.00.3	---Vegetables, NSA, and mixtures of vegetables:		
2006.00.31	----Frozen	0%	0
2006.00.39	----Other	5%	0
2006.00.90	---Other	5%	0
2007	JAMS, FRUIT JELLIES, MARMALADES, FRUIT OR NUT PUREE AND FRUIT OR NUT PASTES, OBTAINED BY COOKING,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2007.10.00	-Homogenised preparations	5%	0
2007.9	-Other:		
2007.91.00	--Citrus fruit	5%	0
2007.99.00	--Other	5%	0
2008	FRUIT, NUTS AND OTHER EDIBLE PARTS OF PLANTS, OTHERWISE PREPARED OR PRESERVED,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OR SPIRIT,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2008.1	-Nuts, ground-nuts and other seeds, whether or not mixed together:		
2008.11.00	--Ground-nuts	5%	0
2008.19.00	--Other, including mixtures	5%	0
2008.20.00	-Pineapples	5%	0
2008.30.00	-Citrus fruit	0%	0
2008.40.00	-Pears	5%	0
2008.50.00	-Apricots	5%	0
2008.60.00	-Cherries	5%	0
2008.70.00	-Peaches, including nectarines	5%	0
2008.80.00	-Strawberries	5%	0
2008.9	-Other, including mixtures other than those of 2008.19.00:		
2008.91.00	--Palm hearts	0%	0
2008.93.00	--Cranberries (Vaccinium macrocarpon, Vaccinium oxycoccos,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Vaccinium vitis-idaea)		
2008.97.00	--Mixtures	0%	0
2008.99.00	--Other	5%	0
2009	FRUIT JUICES (INCLUDING GRAPE MUST) AND VEGETABLE JUICES, UNFERMENTED AND NOT CONTAINING ADDED SPIRIT,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2009.1	-Orange juice:		
2009.11.00	--Frozen	5%	0
2009.12.00	--Not frozen, of a Brix value not exceeding 20	5%	0
2009.19.00	--Other	5%	0
2009.2	-Grapefruit (including pomelo) juice:		
2009.21.00	--Of a Brix value not exceeding 20	5%, or, if lower, $0.45/kg TSS#	0
2009.29.00	--Other	5%, or, if lower, $0.45/kg TSS#	0
2009.3	-Juice of any other single citrus fruit:		
2009.31	--Of a Brix value not exceeding 20:		
2009.31.10	---Lime juice, unsweetened	0%	0
2009.31.20	---Mandarin (including tangerine and satsuma) juice or the juice of clementines, wilkings and similar citrus hybrids	5%	0
2009.31.90	---Other	5%, or, if lower, $0.45/kg TSS#	0
2009.39	--Other:		
2009.39.10	---Lime juice, unsweetened	0%	0
2009.39.20	---Mandarin (including tangerine and satsuma) juice or the juice of clementines, wilkings and similar citrus hybrids	5%	0
2009.39.90	---Other	5%, or, if lower, $0.45/kg TSS#	0
2009.4	-Pineapple juice:		
2009.41.00	--Of a Brix value not exceeding 20	5%	0
2009.49.00	--Other	5%	0
2009.50.00	-Tomato juice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2009.6	-Grape juice (including grape must):		
2009.61.00	--Of a Brix value not exceeding 30	5%	0
2009.69.00	--Other	5%	0
2009.7	-Apple juice:		
2009.71.00	--Of a Brix value not exceeding 20	5%	0
2009.79.00	--Other	5%	0
2009.8	-Juice of any other single fruit or vegetable:		
2009.81.00	--Cranberry (Vaccinium macrocarpon, Vaccinium oxycoccos, Vaccinium vitis-idaea) juice	5%	0
2009.89.00	--Other	5%	0
2009.90.00	-Mixtures of juices	5%	0
21	MISCELLANEOUS EDIBLE PREPARATIONS		
2101	EXTRACTS, ESSENCES AND CONCENTRATES, OF COFFEE, TEA OR MATE AND PREPARATIONS WITH A BASIS OF THESE PRODUCTS OR WITH A BASIS OF COFFEE, TEA OR MATE; ROASTED CHICORY AND OTHER ROASTED COFFEE SUBSTITUTES, AND EXTRACTS, ESSENCES AND CONCENTRATES THEREOF:		
2101.1	-Extracts, essences and concentrates of coffee, and preparations with a basis of these extracts, essences or concentrates or with a basis of coffee:		
2101.11.00	--Extracts, essences and concentrates	0%	0
2101.12.00	--Preparations with a basis of extracts, essences or concentrates or with a basis of coffee	0%	0
2101.20.00	-Extracts, essences and concentrates, of tea or mate, and preparations with a basis of these extracts, essences or concentrates or with a basis of tea or mate	0%	0
2101.30.00	-Roasted chicory and other roasted coffee substitutes, and extracts, essences and concentrates thereof	0%	0
2102	YEASTS (ACTIVE OR INACTIVE); OTHER SINGLE-CELL MICRO-ORGANISMS, DEAD (BUT NOT INCLUDING VACCINES OF 3002); PREPARED BAKING POWDERS:		
2102.10.00	-Active yeasts	0%	0
2102.20.00	-Inactive yeasts; other single-cell micro-organisms, dead	0%	0
2102.30.00	-Prepared baking powders	0%	0
2103	SAUCES AND PREPARATIONS THEREFOR; MIXED CONDIMENTS AND MIXED SEASONINGS; MUSTARD FLOUR AND MEAL AND PREPARED MUSTARD:		
2103.10.00	-Soya sauce	0%	0
2103.20.00	-Tomato ketchup and other tomato sauces	0%	0
2103.30.00	-Mustard flour and meal and prepared mustard	0%	0
2103.90.00	-Other	0%	0
2104	SOUPS AND BROTHS AND PREPARATIONS THEREFOR; HOMOGENISED COMPOSITE FOOD PREPARATIONS:		
2104.10.00	-Soups and broths and preparations therefor	4%	0
2104.20.00	-Homogenised composite food preparations	4%	0
2105.00.00	ICE CREAM AND OTHER EDIBLE ICE, WHETHER OR NOT CONTAINING COCOA	4%	0
2106	FOOD PREPARATION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2106.10	-Protein concentrates and textured protein substances:		
2106.10.10	---Protein concentrates	0%	0
2106.10.20	---Textured protein substances	5%	0
2106.90	-Other:		
2106.90.10	---Goods, as follows: (a) compound alcoholic preparations of a kind used for the manufacture of beverages; (b) food preparations of flour or meal; (c) hydrolysed protein	5%	0
2106.90.20	---Preparations for oral consumption, such as tablets and chewing gum containing nicotine, intended to assist smokers to stop smoking	0%	0
2106.90.90	---Other	4%	0
22	BEVERAGES, SPIRITS AND VINEGAR		
2201	WATERS, INCLUDING NATURAL OR ARTIFICIAL MINERAL WATERS AND AERATED WATERS,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NOR FLAVOURED; ICE AND SNOW:		
2201.10.00	-Mineral waters and aerated waters	0%	0
2201.90.00	-Other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2202	WATERS, INCLUDING MINERAL WATERS AND AERATED WATERS,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OR FLAVOURED, AND OTHER NON-ALCOHOLIC BEVERAGES, NOT INCLUDING FRUIT OR VEGETABLE JUICES OF 2009:		
2202.10.00	-Waters, including mineral waters and aerated waters,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or flavoured	5%	0
2202.90.00	-Other	5%	0
2203	BEER MADE FROM MALT:		
2203.00.20	---Having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not exceeding 1.15% vol	0%	0
2203.00.6	---Other beer, as defined in Additional Note 9 to this Chapter, packaged in an individual container not exceeding 48 L:		
2203.00.61	----Having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1.15% vol but not exceeding 3.0% vol	0%	0
2203.00.62	----Having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3.0% vol but not exceeding 3.5% vol	0%	0
2203.00.69	----Other	0%	0
2203.00.7	---Other beer, as defined in Additional Note 9 to this Chapter, packaged in an individual container exceeding 48 L:		
2203.00.71	----Having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1.15% vol but not exceeding 3.0% vol	0%	0
2203.00.72	----Having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3.0% vol but not exceeding 3.5% vol	0%	0
2203.00.79	----Other	0%	0
2203.00.9	---Other		
2203.00.91	----Having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1.15% vol but not exceeding 10% vol	0%	0
2203.00.99	----Other	0%	0
2204	WINE OF FRESH GRAPES, INCLUDING FORTIFIED WINES; GRAPE MUST OTHER THAN THAT OF 2009:		
2204.10	-Sparkling wine:		
2204.10.2	---In which the natural effervescence is produced solely by secondary fermentation in the bottle:		
2204.10.21	----Having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not exceeding 1.15% vol	5%	0
2204.10.22	----Grape wine as defined in Additional Note 3 to this Chapter	5%	0
2204.10.23	----Other, having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1.15% vol but not exceeding 10% vol	5%	0
2204.10.29	----Other	5%	0
2204.10.8	---Other:		
2204.10.81	----Having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not exceeding 1.15% vol	5%	0
2204.10.82	----Grape wine as defined in Additional Note 3 to this Chapter	5%	0
2204.10.83	----Other, having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1.15% vol but not exceeding 10% vol	5%	0
2204.10.89	----Other	5%	0
2204.2	-Other wine; grape must with fermentation prevented or arrested by the addition of alcohol:		
2204.21	--In containers holding 2 L or less:		
2204.21.10	---Goods, as follows: (a) having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not exceeding 1.15% vol; (b) grape must, not potable	5%	0
2204.21.20	---Grape wine as defined in Additional Note 3 to this Chapter	5%	0
2204.21.30	---Other, having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1.15% vol but not exceeding 10% vol	5%	0
2204.21.90	---Other	5%	0
2204.29	--Other:		
2204.29.10	---Goods, as follows: (a) having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not exceeding 1.15% vol; (b) grape must, not potable	5%	0
2204.29.20	---Grape wine as defined in Additional Note 3 to this Chapter	5%	0
2204.29.30	---Other, having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1.15% vol but not exceeding 10% vol	5%	0
2204.29.90	---Other	5%	0
2204.30	-Other grape must:		
2204.30.10	---Grape wine as defined in Additional Note 3 to this Chapter	5%	0
2204.30.90	---Other	5%	0
2205	VERMOUTH AND OTHER WINE OF FRESH GRAPES FLAVOURED WITH PLANTS OR AROMATIC SUBSTANCES: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2205.10	-In containers holding 2 L or less:		
2205.10.10	---Having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not exceeding 1.15% vol	5%	0
2205.10.20	---Grape wine product as defined in Additional Note 4 to this Chapter	5%	0
2205.10.30	---Other, having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1.15% vol but not exceeding 10% vol	5%	0
2205.10.90	---Other	5%	0
2205.90	-Other:		
2205.90.10	---Having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not exceeding 1.15% vol	5%	0
2205.90.20	---Grape wine product as defined in Additional Note 4 to this Chapter	5%	0
2205.90.30	---Other, having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1.15% vol but not exceeding 10% vol	5%	0
2205.90.90	---Other	5%	0
2206	OTHER FERMENTED BEVERAGES (FOR EXAMPLE, CIDER, PERRY, MEAD); MIXTURES OF FERMENTED BEVERAGES AND MIXTURES OF FERMENTED BEVERAGES AND NON-ALCOHOLIC BEVERAG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2206.00.1	---Grape wine-based beverages: (a) that are goods of neither 2205 or 2206.00.2; and (b) that include a flavour mentioned in paragraph (a) of Additional Note 4 to this Chapter:		
2206.00.13	----Having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not exceeding 10% vol	0%	0
2206.00.14	----Having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10% vol	0%	0
2206.00.2	---Grape wine-based beverages: (a) that are not goods of 2205; and (b) to which subparagraph (b)(ii) of Additional Note 4B to this Chapter applies: and (c)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set out in paragraph (b) of Additional Note 4 to this Chapter:		
2206.00.21	----Containing goods which, if imported separately, would be classified in 2207, having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not exceeding 10% vol	5%	0
2206.00.22	----Containing goods which, if imported separately, would be classified in 2207, having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10% vol	5%	0
2206.00.23	----Containing goods which, if imported separately, would be classified in 2208, having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not exceeding 10% vol	5%	0
2206.00.24	----Containing goods which, if imported separately, would be classified in 2208, having an alcoholic stength by volume exceeding 10% vol	5%	0
2206.00.30	---Beverages, as follows: (a) grape wine as defined in Additional Note 3 to this Chapter, other than goods of 2204, but not containing goods which, if imported separately, would be classified in 2208; (b) grape wine product as defined in Additional Note 4 to this Chapter, other than goods of 2205, but not containing goods which, if imported separately, would be classified in 2207 or 2208; (c) cider or perry as defined in Additional Note 5 to this Chapter; (d) fruit or vegetable wine as defined in Additional 6 to this Chapter but not containing goods which, if imported separately, would be classified in 2207 or 2208; (e) mead as defined in Additional Note 7 to this Chapter but not containing goods which, if imported separately, would be classified in 2207 or 2208; (f) sake as defined in Additional Note 8 to this Chapter	0%	0
2206.00.4	---Beverages, containing goods which, if imported separately, would be classified in 2207 or 2208, as follows: (a) grape wine as defined in Additional Note 3 to this Chapter, other than goods of 2204; (b) grape wine product as defined in Additional Note 4 to this Chapter, other than goods of 2205; (c) fruit or vegetable wine as defined in Additional Note 6 to this Chapter; (d) mead as defined in Additional Note 7 to this Chapter:		
2206.00.41	----Containing goods which, if imported separately, would be classified in 2207	5%	0
2206.00.42	----Containing goods which, if imported separately, would be classified in 2208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2206.00.5	---Beverages, NSA, containing goods which, if imported separately, would be classified in 2207:		
2206.00.51	----Having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not exceeding 1.15% vol	5%	0
2206.00.52	----Having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1.15% vol but not exceeding 10% vol	5%	0
2206.00.59	----Other	5%	0
2206.00.6	---Beverages, NSA, containing goods which, if imported separately, would be classified in 2208:		
2206.00.61	----Having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not exceeding 1.15% vol	5%	0
2206.00.62	----Having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1.15% vol but not exceeding 10% vol	5%	0
2206.00.69	----Other	5%	0
2206.00.7	---Beer, as defined in Addititonal Note 9 to this Chapter, other than that of 2203, packaged in an individual container not exceeding 48 L, NSA:		
2206.00.71	----Having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not exceeding 1.15% vol	0%	0
2206.00.74	----Having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1.15% vol but not exceeding 3.0% vol	0%	0
2206.00.75	----Having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3.0% but not exceeding 3.5%	0%	0
2206.00.78	----Other	0%	0
2206.00.8	---Beer, as defined in Additional Note 9 to this Chapter, other than that of 2203, packaged in an individual container exceeding 48 L, NSA:		
2206.00.81	----Having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not exceeding 1.15% vol	0%	0
2206.00.82	----Having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1.15% vol but not exceeding 3.0% vol	0%	0
2206.00.83	----Having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3.0% vol but not exceeding 3.5% vol	0%	0
2206.00.89	----Other	0%	0
2206.00.9	---Other:		
2206.00.91	----Having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not exceeding 1.15% vol	0%	0
2206.00.92	----Having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1.15% vol but not exceeding 10% vol	0%	0
2206.00.99	----Other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2207	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80% VOL OR HIGHER; ETHYL ALCOHOL AND OTHER SPIRITS, DENATURED, OF ANY STRENGTH:		
2207.10.00	-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80% vol or higher	5%	0
2207.20	-Ethyl alcohol and other spirits, denatured, of any strength:		
2207.20.10	---Ethanol for use as fuel in an internal combustion engine	5%	0
2207.20.90	---Other	5%	0
2208	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VOL.; SPIRITS, LIQUEURS AND OTHER SPIRITUOUS BEVERAGES:		
2208.20	-Spirits obtained by distilling grape wine or grape marc:		
2208.20.10	---Brandy made wholly from grape wine	5%	0
2208.20.90	---Other	5%	0
2208.30.00	-Whiskies	5%	0
2208.40.00	-Rum and other spirits obtained by distilling fermented sugar-cane products	5%	0
2208.50.00	-Gin and Geneva	5%	0
2208.60.00	-Vodka	5%	0
2208.70.00	-Liqueurs and cordials	5%	0
2208.90	-Other:		
2208.90.10	---Having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not exceeding 1.15% vol	5%	0
2208.90.20	---Having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1.15% but not exceeding 10% vol	5%	0
2208.90.90	---Other	5%	0
2209.00.00	VINEGAR AND SUBSTITUTES FOR VINEGAR OBTAINED FROM ACETIC ACID	0%	0
23	RESIDUES AND WASTE FROM THE FOOD INDUSTRIES; PREPARED ANIMAL FODDER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2301	FLOURS, MEALS AND PELLETS, OF MEAT OR MEAT OFFAL, OF FISH OR OF CRUSTACEANS, MOLLUSCS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S, UNFIT FOR HUMAN CONSUMPTION; GREAVES:		
2301.10.00	-Flours, meals and pellets, of meat or meat offal; greaves	0%	0
2301.20.00	-Flours, meals and pellets, of fish or of crustaceans, molluscs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s	0%	0
2302	BRAN, SHARPS AND OTHER RESIDUES, WHETHER OR NOT IN THE FORM OF PELLETS, DERIVED FROM THE SIFTING, MILLING OR OTHER WORKING OF CEREALS OR OF LEGUMINOUS PLANTS:		
2302.10.00	-Of maize (corn)	0%	0
2302.30.00	-Of wheat	0%	0
2302.40.00	-Of other cereals	0%	0
2302.50.00	-Of leguminous plants	0%	0
2303	RESIDUES OF STARCH MANUFACTURE AND SIMILAR RESIDUES, BEET-PULP, BAGASSE AND OTHER WASTE OF SUGAR MANUFACTURE, BREWING OR DISTILLING DREGS AND WASTE, WHETHER OR NOT IN THE FORM OF PELLETS:		
2303.10.00	-Residues of starch manufacture and similar residues	0%	0
2303.20.00	-Beet-pulp, bagasse and other waste of sugar manufacture	0%	0
2303.30.00	-Brewing or distilling dregs and waste	0%	0
2304.00.00	OIL-CAKE AND OTHER SOLID RESIDUES, WHETHER OR NOT GROUND OR IN THE FORM OF PELLETS, RESULTING FROM THE EXTRACTION OF SOYA-BEAN OIL	0%	0
2305.00.00	OIL-CAKE AND OTHER SOLID RESIDUES, WHETHER OR NOT GROUND OR IN THE FORM OF PELLETS, RESULTING FROM THE EXTRACTION OF GROUND-NUT OIL	0%	0
2306	OIL-CAKE AND OTHER SOLID RESIDUES, WHETHER OR NOT GROUND OR IN THE FORM OF PELLETS, RESULTING FROM THE EXTRACTION OF VEGETABLE FATS OR OILS, OTHER THAN THOSE OF 2304.00.00 OR 2305.00.00:		
2306.10.00	-Of cotton seeds	0%	0
2306.20.00	-Of linseed	0%	0
2306.30.00	-Of sunflower seeds	0%	0
2306.4	-Of rape or colza seeds:		
2306.41.00	--Of low erucic acid rape or colza seeds	0%	0
2306.49.00	--Other	0%	0
2306.50.00	-Of coconut or copra	0%	0
2306.60.00	-Of palm nuts or kernels	0%	0
2306.90.00	-Other	0%	0
2307.00.00	WINE LEES; ARGOL	0%	0
2308.00.00	VEGETABLE MATERIALS AND VEGETABLE WASTE, VEGETABLE RESIDUES AND BY-PRODUCTS, WHETHER OR NOT IN THE FORM OF PELLETS, OF A KIND USED IN ANIMAL FEEDING,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0%	0
2309	PREPARATIONS OF A KIND USED IN ANIMAL FEEDING:		
2309.10.00	-Dog or cat food, put up for retail sale	0%	0
2309.90.00	-Other	0%	0
24	TOBACCO AND MANUFACTURED TOBACCO SUBSTITUTES		
2401	UNMANUFACTURED TOBACCO; TOBACCO REFUSE:		
2401.10.00	-Tobacco, not stemmed/stripped	0%	0
2401.20.00	-Tobacco, partly or wholly stemmed/stripped	0%	0
2401.30.00	-Tobacco refuse	0%	0
2402	CIGARS, CHEROOTS, CIGARILLOS AND CIGARETTES, OF TOBACCO OR OF TOBACCO SUBSTITUTES:		
2402.10	-Cigars, cheroots and cigarillos, containing tobacco:		
2402.10.20	---Not exceeding in weight 0.8 grams per stick of tobacco content	0%	0
2402.10.80	---Other	0%	0
2402.20	-Cigarettes containing tobacco:		
2402.20.20	---Not exceeding in weight 0.8 grams per stick of tobacco content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2402.20.80	---Other	0%	0
2402.90.00	-Other	0%	0
2403	OTHER MANUFACTURED TOBACCO AND MANUFACTURED TOBACCO SUBSTITUTES; "HOMOGENISED" OR "RECONSTITUTED" TOBACCO; TOBACCO EXTRACTS AND ESSENCES:		
2403.1	-Smoking tobacco, whether or not containing tobacco substitutes in any proportion:		
2403.11.00	--Water pipe tobacco specified in Subheading Note 1 to this Chapter	0%	0
2403.19	--Other:		
2403.19.10	---In stick form not exceeding in weight 0.8 grams per stick of tobacco content	0%	0
2403.19.90	---Other	0%	0
2403.9	-Other:		
2403.91.00	--"Homogenised" or "reconstituted" tobacco	0%	0
2403.99	--Other:		
2403.99.10	---Not containing tobacco	0%	0
2403.99.80	---Other	0%	0
25	SALT; SULPHUR; EARTHS AND STONE; PLASTERING MATERIALS, LIME AND CEMENT		
2501.00.00	SALT (INCLUDING TABLE SALT AND DENATURED SALT) AND PURE SODIUM CHLORIDE, WHETHER OR NOT IN AQUEOUS SOLUTION OR CONTAINING ADDED ANTI-CAKING OR FREE-FLOWING AGENTS; SEA WATER	0%	0
2502.00.00	UNROASTED IRON PYRITES	0%	0
2503.00.00	SULPHUR OF ALL KINDS, OTHER THAN SUBLIMED SULPHUR, PRECIPITATED SULPHUR AND COLLOIDAL SULPHUR	0%	0
2504	NATURAL GRAPHITE:		
2504.10.00	-In powder or in flakes	0%	0
2504.90.00	-Other	0%	0
2505	NATURAL SANDS OF ALL KINDS, WHETHER OR NOT COLOURED, OTHER THAN METALBEARING SANDS OF CHAPTER 26:		
2505.10.00	-Silica sands and quartz sands	0%	0
2505.90.00	-Other	0%	0
2506	QUARTZ (OTHER THAN NATURAL SANDS); QUARTZITE, WHETHER OR NOT ROUGHLY TRIMMED OR MERELY CUT, BY SAWING OR OTHERWISE, INTO BLOCKS OR SLABS OF A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APE:		
2506.10.00	-Quartz	0%	0
2506.20.00	-Quartzite	0%	0
2507.00.00	KAOLIN AND OTHER KAOLINIC CLAYS, WHETHER OR NOT CALCINED	0%	0
2508	OTHER CLAYS (NOT INCLUDING EXPANDED CLAYS OF 6806), ANDALUSITE, KYANITE AND SILLIMANITE, WHETHER OR NOT CALCINED; MULLITE; CHAMOTTE OR DINAS EARTHS:		
2508.10.00	-Bentonite	0%	0
2508.30.00	-Fire-clay	0%	0
2508.40.00	-Other clays	0%	0
2508.50.00	-Andalusite, kyanite and sillimanite	0%	0
2508.60.00	-Mullite	0%	0
2508.70.00	-Chamotte or dinas earths	0%	0
2509.00.00	CHALK	5%	0
2510	NATURAL CALCIUM PHOSPHATES, NATURAL ALUMINIUM CALCIUM PHOSPHATES AND PHOSPHATIC CHALK:		
2510.10.00	-Unground	0%	0
2510.20.00	-Ground	0%	0
2511	NATURAL BARIUM SULPHATE (BARYTES); NATURAL BARIUM CARBONATE (WITHERITE), WHETHER OR NOT CALCINED, OTHER THAN BARIUM OXIDE OF 2816:		
2511.10.00	-Natural barium sulphate (barytes)	0%	0
2511.20.00	-Natural barium carbonate (witherite)	0%	0
2512.00.00	SILICEOUS FOSSIL MEALS (FOR EXAMPLE, KIESELGUHR, TRIPOLITE AND DIATOMITE) AND SIMILAR SILICEOUS EARTHS, WHETHER OR NOT CALCINED, OF AN APPARENT SPECIFIC GRAVITY OF 1 OR LESS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2513	PUMICE STONE; EMERY; NATURAL CORUNDUM, NATURAL GARNET AND OTHER NATURAL ABRASIVES, WHETHER OR NOT HEAT-TREATED:		
2513.10.00	-Pumice stone	0%	0
2513.20.00	-Emery, natural corundum, natural garnet and other natural abrasives	0%	0
2514.00.00	SLATE, WHETHER OR NOT ROUGHLY TRIMMED OR MERELY CUT, BY SAWING OR OTHERWISE, INTO BLOCKS OR SLABS OF A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APE	5%	0
2515	MARBLE, TRAVERTINE, ECAUSSINE AND OTHER CALCAREOUS MONUMENTAL OR BUILDING STONE OF AN APPARENT SPECIFIC GRAVITY OF 2.5 OR MORE, AND ALABASTER, WHETHER OR NOT ROUGHLY TRIMMED OR MERELY CUT, BY SAWING OR OTHERWISE, INTO BLOCKS OR SLABS OF A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APE:		
2515.1	-Marble and travertine:		
2515.11.00	--Crude or roughly trimmed	5%	0
2515.12.00	--Merely cut, by sawing or otherwise, into blocks or slabs of a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ape	5%	0
2515.20.00	-Ecaussine and other calcareous monumental or building stone; alabaster	0%	0
2516	GRANITE, PORPHYRY, BASALT, SANDSTONE AND OTHER MONUMENTAL OR BUILDING STONE, WHETHER OR NOT ROUGHLY TRIMMED OR MERELY CUT, BY SAWING OR OTHERWISE, INTO BLOCKS OR SLABS OF A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APE:		
2516.1	-Granite:		
2516.11.00	--Crude or roughly trimmed	0%	0
2516.12.00	--Merely cut, by sawing or otherwise, into blocks or slabs of a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ape	5%	0
2516.20	-Sandstone:		
2516.20.10	---Crude or roughly trimmed	0%	0
2516.20.20	---Merely cut, by sawing or otherwise, into blocks or slabs of a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ape	5%	0
2516.90.00	-Other monumental or building stone	0%	0
2517	PEBBLES, GRAVEL, BROKEN OR CRUSHED STONE, OF A KIND COMMONLY USED FOR CONCRETE AGGREGATES, FOR ROAD METALLING OR FOR RAILWAY OR OTHER BALLAST, SHINGLE AND FLINT, WHETHER OR NOT HEAT-TREATED; MACADAM OF SLAG, DROSS OR SIMILAR INDUSTRIAL WASTE,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THE MATERIALS CITED IN THE FIRST PART OF THE HEADING; TARRED MACADAM; GRANULES, CHIPPINGS AND POWDER, OF STONES OF 2515 OR 2516, WHETHER OR NOT HEAT-TREATED:		
2517.10.00	-Pebbles, gravel, broken or crushed stone, of a kind commonly used for concrete aggregates, for road metalling or for railway or other ballast, shingle and flint, whether or not heat-treated	0%	0
2517.20.00	-Macadam of slag, dross or similar industrial waste,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the materials cited in 2517.10.00	0%	0
2517.30.00	-Tarred macadam	0%	0
2517.4	-Granules, chippings and powder, of stones of heading 2515 or 2516, whether or not heat-treated:		
2517.41.00	--Of marble	0%	0
2517.49.00	--Other	0%	0
2518	DOLOMITE, WHETHER OR NOT CALCINED OR SINTERED, INCLUDING DOLOMITE ROUGHLY TRIMMED OR MERELY CUT, BY SAWING OR OTHERWISE, INTO BLOCKS OR SLABS OF A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APE; DOLOMITE RAMMING MIX:		
2518.10.00	-Dolomite, not calcined or sintered	0%	0
2518.20.00	-Calcined or sintered dolomite	0%	0
2518.30.00	-Dolomite ramming mix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2519	NATURAL MAGNESIUM CARBONATE (MAGNESITE); FUSED MAGNESIA; DEAD-BURNED (SINTERED) MAGNESIA, WHETHER OR NOT CONTAINING SMALL QUANTITIES OF OTHER OXIDES ADDED BEFORE SINTERING; OTHER MAGNESIUM OXIDE, WHETHER OR NOT PURE:		
2519.10.00	-Natural magnesium carbonate (magnesite)	0%	0
2519.90.00	-Other	0%	0
2520	GYPSUM; ANHYDRITE; PLASTERS (CONSISTING OF CALCINED GYPSUM OR CALCIUM SULPHATE) WHETHER OR NOT COLOURED, WITH OR WITHOUT SMALL QUANTITIES OF ACCELERATORS OR RETARDERS:		
2520.10.00	-Gypsum; anhydrite	0%	0
2520.20.00	-Plasters	0%	0
2521.00.00	LIMESTONE FLUX; LIMESTONE AND OTHER CALCAREOUS STONE, OF A KIND USED FOR THE MANUFACTURE OF LIME OR CEMENT	0%	0
2522	QUICKLIME, SLAKED LIME AND HYDRAULIC LIME, OTHER THAN CALCIUM OXIDE AND HYDROXIDE OF 2825:		
2522.10.00	-Quicklime	0%	0
2522.20.00	-Slaked lime	0%	0
2522.30.00	-Hydraulic lime	0%	0
2523	PORTLAND CEMENT, ALUMINOUS CEMENT, SLAG CEMENT, SUPERSULPHATE CEMENT AND SIMILAR HYDRAULIC CEMENTS, WHETHER OR NOT COLOURED OR IN THE FORM OF CLINKERS:		
2523.10.00	-Cement clinkers	0%	0
2523.2	-Portland cement:		
2523.21.00	--White cement, whether or not artificially coloured	0%	0
2523.29.00	--Other	0%	0
2523.30.00	-Aluminous cement	5%	0
2523.90.00	-Other hydraulic cements	5%	0
2524	ASBESTOS:		
2524.10.00	-Crocidolite	0%	0
2524.90.00	-Other	0%	0
2525	MICA, INCLUDING SPLITTINGS; MICA WASTE:		
2525.10.00	-Crude mica and mica rifted into sheets or splittings	5%	0
2525.20.00	-Mica powder	0%	0
2525.30.00	-Mica waste	0%	0
2526	NATURAL STEATITE, WHETHER OR NOT ROUGHLY TRIMMED OR MERELY CUT, BY SAWING OR OTHERWISE, INTO BLOCKS OR SLABS OF A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APE; TALC:		
2526.10.00	-Not crushed, not powdered	5%	0
2526.20.00	-Crushed or powdered	5%	0
2528.00.00	Natural borates and concentrates thereof (whether or not calcined), but not including borates separated from natural brine; natural boric acid containing not more than 85% of H3BO3 calculated on the dry weight	0%	0
2529	FELDSPAR; LEUCITE; NEPHELINE AND NEPHELINE SYENITE; FLUORSPAR:		
2529.10.00	-Feldspar	0%	0
2529.2	-Fluorspar:		
2529.21.00	--Containing by weight 97% or less of calcium fluoride	0%	0
2529.22.00	--Containing by weight more than 97% of calcium fluoride	0%	0
2529.30.00	-Leucite; nepheline and nepheline syenite	0%	0
2530	MINERAL SUBSTANC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2530.10.00	-Vermiculite, perlite and chlorites, unexpanded	0%	0
2530.20.00	-Kieserite, epsomite (natural magnesium sulphates)	0%	0
2530.90.00	-Other	0%	0
26	ORES, SLAG AND ASH		
2601	IRON ORES AND CONCENTRATES, INCLUDING ROASTED IRON PYRITES:		
2601.1	-Iron ores and concentrates, other than roasted iron pyrites:		
2601.11.00	--Non-agglomerated	0%	0
2601.12.00	--Agglomerated	0%	0
2601.20.00	-Roasted iron pyrites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2602.00.00	MANGANESE ORES AND CONCENTRATES, INCLUDING FERRUGINOUS MANGANESE ORES AND CONCENTRATES WITH A MANGANESE CONTENT OF 20% OR MORE, CALCULATED ON THE DRY WEIGHT	0%	0
2603.00.00	COPPER ORES AND CONCENTRATES	0%	0
2604.00.00	NICKEL ORES AND CONCENTRATES	0%	0
2605.00.00	COBALT ORES AND CONCENTRATES	0%	0
2606.00.00	ALUMINIUM ORES AND CONCENTRATES	0%	0
2607.00.00	LEAD ORES AND CONCENTRATES	0%	0
2608.00.00	ZINC ORES AND CONCENTRATES	0%	0
2609.00.00	TIN ORES AND CONCENTRATES	0%	0
2610.00.00	CHROMIUM ORES AND CONCENTRATES	0%	0
2611.00.00	TUNGSTEN ORES AND CONCENTRATES	0%	0
2612	URANIUM OR THORIUM ORES AND CONCENTRATES:		
2612.10.00	-Uranium ores and concentrates	0%	0
2612.20.00	-Thorium ores and concentrates	0%	0
2613	MOLYBDENUM ORES AND CONCENTRATES:		
2613.10.00	-Roasted	0%	0
2613.90.00	-Other	0%	0
2614.00.00	TITANIUM ORES AND CONCENTRATES	0%	0
2615	NIOBIUM, TANTALUM, VANADIUM OR ZIRCONIUM ORES AND CONCENTRATES:		
2615.10.00	-Zirconium ores and concentrates	0%	0
2615.90.00	-Other	0%	0
2616	PRECIOUS METAL ORES AND CONCENTRATES:		
2616.10.00	-Silver ores and concentrates	0%	0
2616.90.00	-Other	0%	0
2617	OTHER ORES AND CONCENTRATES:		
2617.10.00	-Antimony ores and concentrates	0%	0
2617.90.00	-Other	0%	0
2618.00.00	GRANULATED SLAG (SLAG SAND) FROM THE MANUFACTURE OF IRON OR STEEL	0%	0
2619.00.00	SLAG, DROSS (OTHER THAN GRANULATED SLAG), SCALINGS AND OTHER WASTE FROM THE MANUFACTURE OF IRON OR STEEL	0%	0
2620	SLAG, ASH AND RESIDUES (OTHER THAN FROM THE MANUFACTURE OF IRON OR STEEL), CONTAINING METALS, ARSENIC OR THEIR COMPOUNDS:		
2620.1	-Containing mainly zinc:		
2620.11.00	--Hard zinc spelter	0%	0
2620.19.00	--Other	0%	0
2620.2	-Containing mainly lead:		
2620.21.00	--Leaded gasoline sludges and leaded anti-knock compound sludges	0%	0
2620.29.00	--Other	0%	0
2620.30.00	-Containing mainly copper	0%	0
2620.40.00	-Containing mainly aluminium	0%	0
2620.60.00	-Containing arsenic, mercury, thallium or their mixtures, of a kind used for the extraction of arsenic or those metals or for the manufacture of their chemical compounds	0%	0
2620.9	-Other:		
2620.91.00	--Containing antimony, beryllium, cadmium, chromium or their mixtures	0%	0
2620.99.00	--Other	0%	0
2621	OTHER SLAG AND ASH, INCLUDING SEAWEED ASH (KELP); ASH AND RESIDUES FROM THE INCINERATION OF MUNICIPAL WASTE:		
2621.10.00	-Ash and residues from the incineration of municipal waste	0%	0
2621.90.00	-Other	0%	0
27	MINERAL FUELS, MINERAL OILS AND PRODUCTS OF THEIR DISTILLATION; BITUMINOUS SUBSTANCES; MINERAL WAXES		
2701	COAL; BRIQUETTES, OVOIDS AND SIMILAR SOLID FUELS MANUFACTURED FROM COAL:		
2701.1	-Coal, whether or not pulverised, but not agglomerated:		
2701.11.00	--Anthracite	0%	0
2701.12.00	--Bituminous coal	0%	0
2701.19.00	--Other coal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2701.20.00	-Briquettes, ovoids and similar solid fuels manufactured from coal	0%	0
2702	LIGNITE, WHETHER OR NOT AGGLOMERATED, EXCLUDING JET:		
2702.10.00	-Lignite, whether or not pulverised, but not agglomerated	0%	0
2702.20.00	-Agglomerated lignite	0%	0
2703.00.00	PEAT (INCLUDING PEAT LITTER), WHETHER OR NOT AGGLOMERATED	0%	0
2704.00.00	COKE AND SEMI-COKE OF COAL, OF LIGNITE OR OF PEAT, WHETHER OR NOT AGGLOMERATED; RETORT CARBON	0%	0
2705.00.00	COAL GAS, WATER GAS, PRODUCER GAS AND SIMILAR GASES, OTHER THAN PETROLEUM GASES AND OTHER GASEOUS HYDROCARBONS	5%	0
2706.00.00	TAR DISTILLED FROM COAL, FROM LIGNITE OR FROM PEAT, AND OTHER MINERAL TARS, WHETHER OR NOT DEHYDRATED OR PARTIALLY DISTILLED, INCLUDING RECONSTITUTED TARS	0%	0
2707	OILS AND OTHER PRODUCTS OF THE DISTILLATION OF HIGH TEMPERATURE COAL TAR; SIMILAR PRODUCTS IN WHICH THE WEIGHT OF THE AROMATIC CONSTITUENTS EXCEEDS THAT OF THE NON-AROMATIC CONSTITUENTS:		
2707.10.00	-Benzol (benzene)	0%	0
2707.20.00	-Toluol (toluene)	0%	0
2707.30.00	-Xylol (xylenes)	0%	0
2707.40.00	-Naphthalene	0%	0
2707.50.00	-Other aromatic hydrocarbon mixtures of which 65% or more by volume (including losses) distils at 250 oC by the ASTM D86 method	0%	0
2707.9	-Other:		
2707.91.00	--Creosote oils	0%	0
2707.99	--Other:		
2707.99.10	---Phenols	5%	0
2707.99.90	---Other	0%	0
2708	PITCH AND PITCH COKE, OBTAINED FROM COAL TAR OR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FROM OTHER MINERAL TARS:		
2708.10.00	-Pitch	0%	0
2708.20.00	-Pitch coke	0%	0
2709	PETROLEUM OILS AND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CRUDE:		
2709.00.10	---For use as a petroleum refinery feedstock at a factory specified in a licence granted pursuant to Part IV of the Excise Act 1901	0%	0
2709.00.90	---Other	0%	0
2710	PETROLEUM OILS AND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OTHER THAN CRUDE; PREPARATION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CONTAINING BY WEIGHT 70% OR MORE OF PETROLEUM OILS OR OF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THESE OILS BEING THE BASIC CONSTITUENTS OF THE PREPARATIONS; WASTE OILS:		
2710.1	-Petroleum oils and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other than crude) and preparation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containing by weight 70% or more of petroleum oils or of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these oils being the basic constituents of the preparations, other than those containing biodiesel and other than waste oils:		
2710.12	--Light oils and preparations:		
2710.12.6	---Gasoline:		
2710.12.61	----For use as fuel in aircraft	0%	0
2710.12.62	----Blends of gasoline and ethanol	0%	0
2710.12.69	----Other	0%	0
2710.12.70	---Other refined or partly refined petroleum products; mineral turpentine	0%	0
2710.12.90	---Other	0%	0
2710.19	--Other:		
2710.19.1	---Crudes, topped or enriched:		
2710.19.14	----For use as a petroleum refinery feedstock at a factory specified in a licence granted under Part IV of the Excise Act 1901	0%	0
2710.19.16	----Other	0%	0
2710.19.2	---Diesel, other than goods of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2710.20.00:		
2710.19.22	----Blends of diesel and ethanol	0%	0
2710.19.28	----Other	0%	0
2710.19.40	---Kerosene for use as fuel in aircraft	0%	0
2710.19.5	---Goods, as follows: (a) heating oil; (b) kerosene, other than goods of 2710.19.40; (c) fuel oil having the characteristics as defined in Additional Note 1 to this Chapter:		
2710.19.51	----Heating oil	0%	0
2710.19.52	----Kerosene, other than goods of 2710.19.40	0%	0
2710.19.53	----Fuel oil having the characteristics as defined in Additional Note 1 to this Chapter	0%	0
2710.19.70	---Other refined or partly refined petroleum products other than lubricants (including lubricant base oils), hydraulic oils, transformer oils and bitumen; mineral turpentine	0%	0
2710.19.9	---Other:		
2710.19.91	----Petroleum based oils, other than grease of 2710.19.92, including (a) lubricant base oils; (b) prepared lubricant additives containing carrier oils; (c) lubricants for engines, gear sets, pumps and bearings; (d) hydraulic fluids; (e) brake fluids; (f) transmission oils; (g) transformer and heat transfer oils	0%	0
2710.19.92	----Petroleum based greases	0%	0
2710.19.99	----Other	0%	0
2710.20.00	-Petroleum oils and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other than crude) and preparation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containing by weight 70% or more of petroleum oils or of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these oils being the basic constituents of the preparations, containing biodiesel, other than waste oils	0%	0
2710.9	-Waste oils:		
2710.91	--Containing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polychlorinated terphenyls (PCTs) or polybrominated biphenyls (PBBs):		
2710.91.1	---Crudes, topped or enriched:		
2710.91.14	----For use as a petroleum refinery feedstock at a factory specified in a licence granted under Part IV of the Excise Act 1901	0%	0
2710.91.16	----Other	0%	0
2710.91.2	---Diesel, other than blends of 2710.91.80:		
2710.91.22	----Blends of diesel and ethanol	0%	0
2710.91.28	----Other	0%	0
2710.91.40	---Kerosene for use as fuel in aircraft	0%	0
2710.91.5	---Goods, as follows: (a) heating oil; (b) kerosene, other than goods of 2710.91.40; (c) fuel oil having the characteristics as defined in Additional Note 1 to this Chapter:		
2710.91.51	----Heating oil	0%	0
2710.91.52	----Kerosene, other than goods of 2710.91.40	0%	0
2710.91.53	----Fuel oil having the characteristics as defined in Additional Note 1 to this Chapter	0%	0
2710.91.6	---Gasoline:		
2710.91.61	----For use as fuel in aircraft	0%	0
2710.91.62	----Blends of gasoline and ethanol	0%	0
2710.91.69	----Other	0%	0
2710.91.70	---Other refined or partly refined petroleum products other than lubricants (including lubricant base oils), hydraulic oils, transformer oils and bitumen; mineral turpentine	0%	0
2710.91.80	---Blends of biodiesel and other substances	0%	0
2710.91.9	---Other:		
2710.91.91	----Petroleum based oils, other than grease of 2710.91.92, including: (a) lubricant based oils; (b) prepared lubricant additives containing carrier oils: (c) lubricants for engines, gear sets, pumps and bearings; (d) hydraulic fluids; (e) brake fluids; (f) transmission oils; (g) transformer and heat transfer oils	0%	0
2710.91.92	----Petroleum based greases	0%	0
2710.91.99	----Other	0%	0
2710.99	--Other:		
2710.99.1	---Crudes, topped or enriched:		
2710.99.14	----For use as a petroleum refinery feedstock at a factory specified in a licence granted under Part IV of the Excise Act 1901	0%	0
2710.99.16	----Other	0%	0
2710.99.2	---Diesel, other than blends of 2710.99.80:		
2710.99.22	----Blends of diesel and ethanol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2710.99.28	----Other	0%	0
2710.99.40	---Kerosene for use as fuel in aircraft	0%	0
2710.99.5	---Goods, as follows: (a) heating oil; (b) kerosene, other than goods of 2710.99.40; (c) fuel oil having the characteristics as defined in Additional Note 1 to this Chapter:		
2710.99.51	----Heating oil	0%	0
2710.99.52	----Kerosene, other than goods of 2710.99.40	0%	0
2710.99.53	----Fuel oil having the characteristics as defined in Additional Note 1 to this Chapter	0%	0
2710.99.6	---Gasoline:		
2710.99.61	----For use as fuel in aircraft	0%	0
2710.99.62	----Blends of gasoline and ethanol	0%	0
2710.99.69	----Other	0%	0
2710.99.70	---Other refined or partly refined petroleum products other than lubricants (including lubricant base oils), hydraulic oils, transformer oils and bitumen; mineral turpentine	0%	0
2710.99.80	---Blends of biodiesel and other substances	0%	0
2710.99.9	---Other:		
2710.99.91	----Petroleum based oils, other than grease of 2710.99.92, including (a) lubricant base oils; (b) prepared lubricant additives containing carrier oils; (c) lubricants for engines, gear sets, pumps and bearings; (d) hydraulic fluids; (e) brake fluids; (f) transmission oils; (g) transformer and heat transfer oils	0%	0
2710.99.92	----Petroleum based greases	0%	0
2710.99.99	----Other	0%	0
2711	PETROLEUM GASES AND OTHER GASEOUS HYDROCARBONS:		
2711.1	-Liquefied:		
2711.11.00	--Natural gas	0%	0
2711.12	--Propane:		
2711.12.10	---LPG as defined in Additional Note 2 to this Chapter	0%	0
2711.12.90	---Other	0%	0
2711.13	--Butanes:		
2711.13.10	---LPG as defined in Additional Note 2 to this Chapter	0%	0
2711.13.90	---Other	0%	0
2711.14.00	--Ethylene, propylene, butylene and butadiene	0%	0
2711.19.00	--Other	0%	0
2711.2	-In gaseous state:		
2711.21	--Natural gas:		
2711.21.10	---CNG as defined in Additional Note 5 to this Chapter	0%	0
2711.21.90	---Other	0%	0
2711.29.00	--Other	0%	0
2712	PETROLEUM JELLY; PARAFFIN WAX, MICRO-CRYSTALLINE PETROLEUM WAX, SLACK WAX, OZOKERITE, LIGNITE WAX, PEAT WAX, OTHER MINERAL WAXES, AND SIMILAR PRODUCTS OBTAINED BY SYNTHESIS OR BY OTHER PROCESSES, WHETHER OR NOT COLOURED:		
2712.10.00	-Petroleum jelly	0%	0
2712.20.00	-Paraffin wax containing by weight less than 0.75% of oil	0%	0
2712.90.00	-Other	0%	0
2713	PETROLEUM COKE, PETROLEUM BITUMEN AND OTHER RESIDUES OF PETROLEUM OILS OR OF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2713.1	-Petroleum coke:		
2713.11.00	--Not calcined	0%	0
2713.12.00	--Calcined	0%	0
2713.20.00	-Petroleum bitumen	0%	0
2713.90.00	-Other residues of petroleum oils or of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0%	0
2714	BITUMEN AND ASPHALT, NATURAL; BITUMINOUS OR OIL SHALE AND TAR SANDS; ASPHALTITES AND ASPHALTIC ROCKS:		
2714.10.00	-Bituminous or oil shale and tar sands	0%	0
2714.90.00	-Other	0%	0
2715.00.00	BITUMINOUS MIXTURES BASED ON NATURAL ASPHALT, ON NATURAL BITUMEN, ON PETROLEUM BITUMEN, ON MINERAL TAR OR ON MINERAL TAR PITCH (FOR EXAMPLE, BITUMINOUS MASTICS, CUT-BACKS)	5%	0
28	INORGANIC CHEMICALS; ORGANIC OR INORGANIC COMPOUNDS OF PRECIOUS METALS, OF RARE-EARTH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METALS, OF RADIOACTIVE ELEMENTS OR OF ISOTOPES		
2801	FLUORINE, CHLORINE, BROMINE AND IODINE:		
2801.10.00	-Chlorine	0%	0
2801.20.00	-Iodine	0%	0
2801.30.00	-Fluorine; bromine	0%	0
2802.00.00	SULPHUR, SUBLIMED OR PRECIPITATED; COLLOIDAL SULPHUR	0%	0
2803.00.00	CARBON (CARBON BLACKS AND OTHER FORMS OF CARBON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0%	0
2804	HYDROGEN, RARE GASES AND OTHER NON-METALS:		
2804.10.00	-Hydrogen	0%	0
2804.2	-Rare gases:		
2804.21.00	--Argon	0%	0
2804.29.00	--Other	0%	0
2804.30.00	-Nitrogen	0%	0
2804.40.00	-Oxygen	0%	0
2804.50.00	-Boron; tellurium	0%	0
2804.6	-Silicon:		
2804.61.00	--Containing by weight not less than 99.99% of silicon	0%	0
2804.69.00	--Other	0%	0
2804.70.00	-Phosphorus	0%	0
2804.80.00	-Arsenic	0%	0
2804.90.00	-Selenium	0%	0
2805	ALKALI OR ALKALINE-EARTH METALS; RARE-EARTH METALS, SCANDIUM AND YTTRIUM, WHETHER OR NOT INTERMIXED OR INTERALLOYED; MERCURY:		
2805.1	-Alkali or alkaline-earth metals:		
2805.11.00	--Sodium	0%	0
2805.12.00	--Calcium	0%	0
2805.19.00	--Other	0%	0
2805.30.00	-Rare-earth metals, scandium and yttrium whether or not intermixed or interalloyed	0%	0
2805.40.00	-Mercury	0%	0
2806	HYDROGEN CHLORIDE (HYDROCHLORIC ACID); CHLOROSULPHURIC ACID:		
2806.10.00	-Hydrogen chloride (hydrochloric acid)	0%	0
2806.20.00	-Chlorosulphuric acid	0%	0
2807.00.00	SULPHURIC ACID; OLEUM	0%	0
2808.00.00	NITRIC ACID; SULPHONITRIC ACIDS	0%	0
2809	DIPHOSPHORUS PENTAOXIDE; PHOSPHORIC ACID; POLYPHOSPHORIC ACIDS,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2809.10.00	-Diphosphorus pentaoxide	0%	0
2809.20	-Phosphoric acid and polyphosphoric acids:		
2809.20.10	---Phosphoric acid, containing by weight: (a) 0.45%, or more, in a combined amount, of iron, aluminium and magnesium; and (b) 0.5%, or more, of sulphuric acid, based on an acid containing by weight, 75% orthophosphoric acid	0%	0
2809.20.90	---Other	5%	0
2810.00.00	OXIDES OF BORON; BORIC ACIDS	0%	0
2811	OTHER INORGANIC ACIDS AND OTHER INORGANIC OXYGEN COMPOUNDS OF NON-METALS:		
2811.1	-Other inorganic acids:		
2811.11.00	--Hydrogen fluoride (hydrofluoric acid)	0%	0
2811.19.00	--Other	0%	0
2811.2	-Other inorganic oxygen compounds of non-metals:		
2811.21.00	--Carbon dioxide	0%	0
2811.22.00	--Silicon dioxide	0%	0
2811.29.00	--Other	0%	0
2812	HALIDES AND HALIDE OXIDES OF NON-METALS:		
2812.10.00	-Chlorides and chloride oxides	0%	0
2812.90.00	-Other	0%	0
2813	SULPHIDES OF NON-METALS; COMMERCIAL PHOSPHORUS TRISULPHIDE:		
2813.10.00	-Carbon disulphide	0%	0
2813.90.00	-Other	0%	0
2814	AMMONIA, ANHYDROUS OR IN AQUEOUS SOLUTION:		
2814.10.00	-Anhydrous ammonia	0%	0
2814.20.00	-Ammonia in aqueous solution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2815	SODIUM HYDROXIDE (CAUSTIC SODA); POTASSIUM HYDROXIDE (CAUSTIC POTASH); PEROXIDES OF SODIUM OR POTASSIUM:		
2815.1	-Sodium hydroxide (caustic soda):		
2815.11.00	--Solid	0%	0
2815.12.00	--In aqueous solution (soda lye or liquid soda)	0%	0
2815.20.00	-Potassium hydroxide (caustic potash)	0%	0
2815.30.00	-Peroxides of sodium or potassium	0%	0
2816	HYDROXIDE AND PEROXIDE OF MAGNESIUM; OXIDES, HYDROXIDES AND PEROXIDES, OF STRONTIUM OR BARIUM:		
2816.10.00	-Hydroxide and peroxide of magnesium	0%	0
2816.40.00	-Oxides, hydroxides and peroxides, of strontium or barium	0%	0
2817.00.00	ZINC OXIDE; ZINC PEROXIDE	0%	0
2818	ARTIFICIAL CORUNDUM,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ALUMINIUM OXIDE; ALUMINIUM HYDROXIDE:		
2818.10	-Artificial corundum,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2818.10.10	---Chemically defined	0%	0
2818.10.90	---Other	5%	0
2818.20.00	-Aluminium oxide, other than artificial corundum	0%	0
2818.30.00	-Aluminium hydroxide	0%	0
2819	CHROMIUM OXIDES AND HYDROXIDES:		
2819.10.00	-Chromium trioxide	0%	0
2819.90.00	-Other	0%	0
2820	MANGANESE OXIDES:		
2820.10.00	-Manganese dioxide	0%	0
2820.90.00	-Other	0%	0
2821	IRON OXIDES AND HYDROXIDES; EARTH COLOURS CONTAINING 70% OR MORE BY WEIGHT OF COMBINED IRON EVALUATED AS FE2O3:		
2821.10.00	-Iron oxides and hydroxides	0%	0
2821.20.00	-Earth colours	0%	0
2822.00.00	COBALT OXIDES AND HYDROXIDES; COMMERCIAL COBALT OXIDES	0%	0
2823.00.00	TITANIUM OXIDES	0%	0
2824	LEAD OXIDES; RED LEAD AND ORANGE LEAD:		
2824.10.00	-Lead monoxide (litharge, massicot)	0%	0
2824.90.00	-Other	0%	0
2825	HYDRAZINE AND HYDROXYLAMINE AND THEIR INORGANIC SALTS; OTHER INORGANIC BASES; OTHER METAL OXIDES, HYDROXIDES AND PEROXIDES:		
2825.10.00	-Hydrazine and hydroxylamine and their inorganic salts	0%	0
2825.20.00	-Lithium oxide and hydroxide	0%	0
2825.30.00	-Vanadium oxides and hydroxides	0%	0
2825.40.00	-Nickel oxides and hydroxides	0%	0
2825.50.00	-Copper oxides and hydroxides	0%	0
2825.60.00	-Germanium oxides and zirconium dioxide	0%	0
2825.70.00	-Molybdenum oxides and hydroxides	0%	0
2825.80.00	-Antimony oxides	0%	0
2825.90.00	-Other	0%	0
2826	FLUORIDES; FLUOROSILICATES, FLUOROALUMINATES AND OTHER COMPLEX FLUORINE SALTS:		
2826.1	-Fluorides:		
2826.12.00	--Of aluminium	0%	0
2826.19.00	--Other	0%	0
2826.30.00	-Sodium hexafluoroaluminate (synthetic cryolite)	0%	0
2826.90.00	-Other	0%	0
2827	CHLORIDES, CHLORIDE OXIDES AND CHLORIDE HYDROXIDES; BROMIDES AND BROMIDE OXIDES; IODIDES AND IODIDE OXIDES:		
2827.10.00	-Ammonium chloride	0%	0
2827.20.00	-Calcium chloride	0%	0
2827.3	-Other chlorides:		
2827.31.00	--Of magnesium	0%	0
2827.32.00	--Of aluminium	0%	0
2827.35.00	--Of nickel	0%	0
2827.39.00	--Other	0%	0
2827.4	-Chloride oxides and chloride hydroxides:		
2827.41.00	--Of copper	0%	0
2827.49.00	--Other	0%	0
2827.5	-Bromides and bromide oxides:		
2827.51.00	--Bromides of sodium or of potassium	0%	0
2827.59.00	--Other	0%	0
2827.60.00	-Iodides and iodide oxides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2828	HYPOCHLORITES; COMMERCIAL CALCIUM HYPOCHLORITE; CHLORITES; HYPOBROMITES:		
2828.10.00	-Commercial calcium hypochlorite and other calcium hypochlorites	0%	0
2828.90.00	-Other	0%	0
2829	CHLORATES AND PERCHLORATES; BROMATES AND PERBROMATES; IODATES AND PERIODATES:		
2829.1	-Chlorates:		
2829.11.00	--Of sodium	0%	0
2829.19.00	--Other	0%	0
2829.90.00	-Other	0%	0
2830	SULPHIDES; POLYSULPHIDES,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2830.10.00	-Sodium sulphides	0%	0
2830.90.00	-Other	0%	0
2831	DITHIONITES AND SULPHOXYLATES:		
2831.10.00	-Of sodium	0%	0
2831.90.00	-Other	0%	0
2832	SULPHITES; THIOSULPHATES:		
2832.10.00	-Sodium sulphites	0%	0
2832.20.00	-Other sulphites	0%	0
2832.30.00	-Thiosulphates	0%	0
2833	SULPHATES; ALUMS; PEROXOSULPHATES (PERSULPHATES):		
2833.1	-Sodium sulphates:		
2833.11.00	--Disodium sulphate	5%	0
2833.19.00	--Other	0%	0
2833.2	-Other sulphates:		
2833.21.00	--Of magnesium	5%	0
2833.22.00	--Of aluminium	5%	0
2833.24.00	--Of nickel	0%	0
2833.25.00	--Of copper	5%	0
2833.27.00	--Of barium	0%	0
2833.29	--Other:		
2833.29.10	---Of zinc	5%	0
2833.29.90	---Other	0%	0
2833.30.00	-Alums	0%	0
2833.40.00	-Peroxosulphates (persulphates)	0%	0
2834	NITRITES; NITRATES:		
2834.10.00	-Nitrites	0%	0
2834.2	-Nitrates:		
2834.21.00	--Of potassium	0%	0
2834.29.00	--Other	0%	0
2835	PHOSPHINATES (HYPOPHOSPHITES), PHOSPHONATES (PHOSPHITES), PHOSPHATES; POLYPHOSPHATES,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2835.10.00	-Phosphinates (hypophosphites) and phosphonates (phosphites)	0%	0
2835.2	-Phosphates:		
2835.22.00	--Of mono- or disodium	5%	0
2835.24.00	--Of potassium	0%	0
2835.25.00	--Calcium hydrogenorthophosphate ("dicalcium phosphate")	0%	0
2835.26.00	--Other phosphates of calcium	5%	0
2835.29.00	--Other	0%	0
2835.3	-Polyphosphates:		
2835.31.00	--Sodium triphosphate (sodium tripolyphosphate)	5%	0
2835.39	--Other:		
2835.39.10	---Of sodium, including pyrophosphates and metaphosphates	5%	0
2835.39.90	---Other	0%	0
2836	CARBONATES; PEROXOCARBONATES (PERCARBONATES); COMMERCIAL AMMONIUM CARBONATE CONTAINING AMMONIUM CARBAMATE:		
2836.20.00	-Disodium carbonate	5%	0
2836.30.00	-Sodium hydrogencarbonate (sodium bicarbonate)	0%	0
2836.40.00	-Potassium carbonates	0%	0
2836.50.00	-Calcium carbonate	0%	0
2836.60.00	-Barium carbonate	0%	0
2836.9	-Other:		
2836.91.00	--Lithium carbonates	0%	0
2836.92.00	--Strontium carbonate	0%	0
2836.99.00	--Other	0%	0
2837	CYANIDES, CYANIDE OXIDES AND COMPLEX CYANIDES:		
2837.1	-Cyanides and cyanide oxides:		
2837.11.00	--Of sodium	0%	0
2837.19.00	--Other	0%	0
2837.20.00	-Complex cyanides	0%	0
2839	SILICATES; COMMERCIAL ALKALI METAL SILICATES:		
2839.1	-Of sodium: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2839.11.00	--Sodium metasilicates	0%	0
2839.19.00	--Other	0%	0
2839.90.00	-Other	0%	0
2840	BORATES; PEROXOBORATES (PERBORATES):		
2840.1	-Disodium tetraborate (refined borax):		
2840.11.00	--Anhydrous	0%	0
2840.19.00	--Other	0%	0
2840.20.00	-Other borates	0%	0
2840.30.00	-Peroxoborates (perborates)	5%	0
2841	SALTS OF OXOMETALLIC OR PEROXOMETALLIC ACIDS:		
2841.30.00	-Sodium dichromate	0%	0
2841.50	-Other chromates and dichromates; peroxochromates:		
2841.50.20	---Goods, as follows: (a) chromates of zinc or of lead; (b) potassium dichromate	0%	0
2841.50.90	---Other	5%	0
2841.6	-Manganites, manganates and permanganates:		
2841.61.00	--Potassium permanganate	0%	0
2841.69.00	--Other	0%	0
2841.70.00	-Molybdates	0%	0
2841.80.00	-Tungstates (wolframates)	0%	0
2841.90	-Other:		
2841.90.10	---Aluminates	5%	0
2841.90.90	---Other	0%	0
2842	OTHER SALTS OF INORGANIC ACIDS OR PEROXOACIDS (INCLUDING ALUMINOSILICATES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OTHER THAN AZIDES:		
2842.10	-Double or complex silicates, including aluminosilicates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2842.10.10	---Aluminosilicates, not chemically defined	5%	0
2842.10.90	---Other	0%	0
2842.90.00	-Other	0%	0
2843	COLLOIDAL PRECIOUS METALS; INORGANIC OR ORGANIC COMPOUNDS OF PRECIOUS METALS,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AMALGAMS OF PRECIOUS METALS:		
2843.10.00	-Colloidal precious metals	0%	0
2843.2	-Silver compounds:		
2843.21.00	--Silver nitrate	0%	0
2843.29.00	--Other	0%	0
2843.30.00	-Gold compounds	0%	0
2843.90.00	-Other compounds; amalgams	0%	0
2844	RADIOACTIVE CHEMICAL ELEMENTS AND RADIOACTIVE ISOTOPES (INCLUDING THE FISSILE OR FERTILE CHEMICAL ELEMENTS AND ISOTOPES) AND THEIR COMPOUNDS; MIXTURES AND RESIDUES CONTAINING THESE PRODUCTS:		
2844.10.00	-Natural uranium and its compounds; alloys, dispersions (including cermets), ceramic products and mixtures containing natural uranium or natural uranium compounds	0%	0
2844.20.00	-Uranium enriched in U235 and its compounds; plutonium and its compounds; alloys, dispersions (including cermets), ceramic products and mixtures containing uranium enriched in U235, plutonium or compounds of these products	0%	0
2844.30.00	-Uranium depleted in U235 and its compounds; thorium and its compounds; alloys, dispersions (including cermets), ceramic products and mixtures containing uranium depleted in U235, thorium or compounds of these products	0%	0
2844.40.00	-Radioactive elements and isotopes and compounds other than those of 2844.10.00, 2844.20.00 or 2844.30.00; alloys, dispersions (including cermets), ceramic products and mixtures containing these elements, isotopes or compounds; radioactive residues	0%	0
2844.50.00	-Spent (irradiated) fuel elements (cartridges) of nuclear reactors	0%	0
2845	ISOTOPES OTHER THAN THOSE OF 2844; COMPOUNDS, INORGANIC OR ORGANIC, OF SUCH ISOTOPES,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2845.10.00	-Heavy water (deuterium oxide)	0%	0
2845.90.00	-Other	0%	0
2846	COMPOUNDS, INORGANIC OR ORGANIC, OF RARE-EARTH METALS, OF YTTRIUM OR OF SCANDIUM OR OF MIXTURES OF THESE METALS: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2846.10.00	-Cerium compounds	0%	0
2846.90.00	-Other	0%	0
2847.00.00	HYDROGEN PEROXIDE, WHETHER OR NOT SOLIDIFIED WITH UREA	5%	0
2848.00.00	PHOSPHIDES,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EXCLUDING FERROPHOSPHORUS	0%	0
2849	CARBIDES,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2849.10.00	-Of calcium	0%	0
2849.20.00	-Of silicon	0%	0
2849.90.00	-Other	0%	0
2850.00.00	HYDRIDES, NITRIDES, AZIDES, SILICIDES AND BORIDES,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OTHER THAN COMPOUNDS WHICH ARE ALSO CARBIDES OF 2849	0%	0
2852	Inorganic or organic compounds of mercury,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excluding amalgams:		
2852.10	-Chemically defined:		
2852.10.10	---Compounds of mercury, as follows: (a) aluminates; (b) chromates, dichromates or peroxochromates; (c) goods of 2931.90.10; (d) goods of 2937.50.10; (e) peroxoborates (perborates); (f) salts of the carboxylic acids of 2915.70.00, 2915.90.00, 2916.15.00, 2916.19.10 or 2918.9; (g) salts and derivatives of the carboxylic acids of 2917.3, but not including salts of terephthalic acid; (h) toluidine derivatives containing fluoro, nitro or propyl groups; (ij) unmixed products for photographic uses, put up in measures portions or put up for retail sale in a form ready for use	5%	0
2852.10.20	---Compounds of mercury, as follows: (a) salts and derivatives of acyclic monoamines of 2921.1; (b) salts of acetic acid; (c) salts of triethanolamine	5%	0
2852.10.90	---Other	0%	0
2852.90	-Other:		
2852.90.10	---Compounds of mercury, as follows: (a) polysulphides; (b) polyphosphates; (c) phosphides; (d) carbides; (e) hydrides; (f) azides; (g) nitrides; (h) silicides; (ij) borides; (k) salts of nucleic acids; (l) water insoluble salts of naphthenic acids; (m) tannates and other tannin derivatives; (n) caseinates and other casein derivatives; (o) albuminates and other albumin derivatives; (p) peptonates, peptone derivatives and other protein substances	0%	0
2852.90.90	---Other, including aluminosilicates	5%	0
2853.00.00	OTHER INORGANIC COMPOUNDS (INCLUDING DISTILLED OR CONDUCTIVITY WATER AND WATER OF SIMILAR PURITY); LIQUID AIR (WHETHER OR NOT RARE GASES HAVE BEEN REMOVED); COMPRESSED AIR; AMALGAMS, OTHER THAN AMALGAMS OF PRECIOUS METALS	0%	0
29	ORGANIC CHEMICALS		
2901	ACYCLIC HYDROCARBONS:		
2901.10.00	-Saturated	0%	0
2901.2	-Unsaturated:		
2901.21.00	--Ethylene	0%	0
2901.22.00	--Propene (propylene)	0%	0
2901.23.00	--Butene (butylene) and isomers thereof	0%	0
2901.24.00	--Buta-1,3-diene and isoprene	0%	0
2901.29.00	--Other	0%	0
2902	CYCLIC HYDROCARBONS:		
2902.1	-Cyclanes, cyclenes and cycloterpenes:		
2902.11.00	--Cyclohexane	0%	0
2902.19.00	--Other	0%	0
2902.20.00	-Benzene	0%	0
2902.30.00	-Toluene	0%	0
2902.4	-Xylenes:		
2902.41.00	--o-Xylene	0%	0
2902.42.00	--m-Xylene	0%	0
2902.43.00	--p-Xylene	0%	0
2902.44.00	--Mixed xylene isomers	0%	0
2902.50.00	-Styrene	5%	0
2902.60.00	-Ethylbenzene	0%	0
2902.70.00	-Cumene	0%	0
2902.90.00	-Other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2903	HALOGENATED DERIVATIVES OF HYDROCARBONS:		
2903.1	-Saturated chlorinated derivatives of acyclic hydrocarbons:		
2903.11.00	--Chloromethane (methyl chloride) and chloroethane (ethyl chloride)	0%	0
2903.12.00	--Dichloromethane (methylene chloride)	0%	0
2903.13.00	--Chloroform (trichloromethane)	0%	0
2903.14.00	--Carbon tetrachloride	0%	0
2903.15.00	--Ethylene dichloride (ISO) (1,2-dichloroethane)	0%	0
2903.19.00	--Other	0%	0
2903.2	-Unsaturated chlorinated derivatives of acyclic hydrocarbons:		
2903.21.00	--Vinyl chloride (chloroethylene)	0%	0
2903.22.00	--Trichloroethylene	0%	0
2903.23.00	--Tetrachloroethylene (perchloroethylene)	0%	0
2903.29.00	--Other	0%	0
2903.3	-Fluorinated, brominated or iodinated derivatives of acyclic hydrocarbons:		
2903.31.00	--Ethylene dibromide (ISO) (1,2-dibromoethane)	0%	0
2903.39.00	--Other	0%	0
2903.7	-Halogenated derivatives of acyclic hydrocarbons containing two or more different halogens:		
2903.71.00	--Chlorodifluoromethane	5%	0
2903.72.00	--Dichlorotrifluoroethanes	5%	0
2903.73.00	--Dichlorofluoroethanes	5%	0
2903.74.00	--Chlorodifluoroethanes	5%	0
2903.75.00	--Dichloropentafluoropropanes	5%	0
2903.76.00	--Bromochlorodifluoromethane, bromotrifluoromethane and dibromotetrafluoroethanes	0%	0
2903.77.00	--Other, perhalogenated only with fluorine and chlorine	0%	0
2903.78.00	--Other perhalogenated derivatives	0%	0
2903.79	--Other:		
2903.79.10	---Other chlorofluorinated derivatives	5%	0
2903.79.90	---Other	0%	0
2903.8	-Halogenated derivatives of cyclanic, cyclenic or cycloterpenic hydrocarbons:		
2903.81.00	--1,2,3,4,5,6-Hexachlorocyclohexane (HCH(ISO)), including lindane (ISO, INN)	0%	0
2903.82.00	--Aldrin (ISO), chlordane (ISO) and heptachlor (ISO)	0%	0
2903.89.00	--Other	0%	0
2903.9	-Halogenated derivatives of aromatic hydrocarbons:		
2903.91.00	--Chlorobenzene, o-dichlorobenzene and p-dichlorobenzene	5%	0
2903.92.00	--Hexachlorobenzene (ISO) and DDT (ISO) (clofentane (INN), 1,1,1-trichloro-2,2-bis(p-chlorophenyl)ethane)	0%	0
2903.99.00	--Other	0%	0
2904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OF HYDROCARBONS, WHETHER OR NOT HALOGENATED:		
2904.10.00	-Derivatives containing only sulpho groups, their salts and ethyl esters	0%	0
2904.20.00	-Derivatives containing only nitro or only nitroso groups	0%	0
2904.90.00	-Other	0%	0
2905	ACYCLIC ALCOHOLS AND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2905.1	-Saturated monohydric alcohols:		
2905.11.00	--Methanol (methyl alcohol)	0%	0
2905.12.00	--Propan-1-ol (propyl alcohol) and propan-2-ol (isopropyl alcohol)	0%	0
2905.13.00	--Butan-1-ol (n-butyl alcohol)	5%	0
2905.14.00	--Other butanols	0%	0
2905.16.00	--Octanol (octyl alcohol) and isomers thereof	5%	0
2905.17.00	--Dodecan-1-ol (lauryl alcohol), hexadecan-1-ol (cetyl alcohol) and octadecan-1-ol (stearyl alcohol)	0%	0
2905.19	--Other:		
2905.19.10	---Goods, as follows: (a) 4-methylpentan-2-ol; (b) primary alcohols containing not less than 6 carbon atoms	5%	0
2905.19.90	---Other	0%	0
2905.2	-Unsaturated monohydric alcohols:		
2905.22.00	--Acyclic terpene alcohols	0%	0
2905.29.00	--Other	0%	0
2905.3	-Diols:		
2905.31.00	--Ethylene glycol (ethanediol)	5%	0
2905.32.00	--Propylene glycol (propane-1,2-diol)	5%	0
2905.39.00	--Other	0%	0
2905.4	-Other polyhydric alcohols: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2905.41.00	--2-Ethyl-2-(hydroxymethyl)propane-1,3-diol (trimethylolpropane)	0%	0
2905.42.00	--Pentaerythritol	0%	0
2905.43.00	--Mannitol	0%	0
2905.44.00	--D-glucitol (sorbitol)	5%	0
2905.45.00	--Glycerol	5%	0
2905.49.00	--Other	0%	0
2905.5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of acyclic alcohols:		
2905.51.00	--Ethchlorvynol (INN)	0%	0
2905.59.00	--Other	0%	0
2906	CYCLIC ALCOHOLS AND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2906.1	-Cyclanic, cyclenic or cycloterpenic:		
2906.11.00	--Menthol	0%	0
2906.12.00	--Cyclohexanol, methylcyclohexanols and dimethylcyclohexanols	0%	0
2906.13.00	--Sterols and inositols	0%	0
2906.19.00	--Other	0%	0
2906.2	-Aromatic:		
2906.21.00	--Benzyl alcohol	0%	0
2906.29.00	--Other	0%	0
2907	PHENOLS; PHENOL-ALCOHOLS:		
2907.1	-Monophenols:		
2907.11.00	--Phenol (hydroxybenzene) and its salt	5%	0
2907.12.00	--Cresols and their salts	0%	0
2907.13.00	--Octylphenol, nonylphenol and their isomers; salts thereof	0%	0
2907.15.00	--Naphthols and their salts	0%	0
2907.19.00	--Other	0%	0
2907.2	-Polyphenols; phenol-alcohols:		
2907.21.00	--Resorcinol and its salts	0%	0
2907.22.00	--Hydroquinone (quinol) and its salts	0%	0
2907.23.00	--4,4'-Isopropylidenediphenol (bisphenol A, diphenylolpropane) and its salts	0%	0
2907.29.00	--Other	0%	0
2908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OF PHENOLS OR PHENOL-ALCOHOLS:		
2908.1	-Derivatives containing only halogen substituents and their salts:		
2908.11.00	--Pentachlorophenol (ISO)	0%	0
2908.19.00	--Other	0%	0
2908.9	-Other:		
2908.91.00	--Dinoseb (ISO) and its salts	0%	0
2908.92.00	--4,6-Dinitro-o-cresol (DNOC (ISO)) and its salts	0%	0
2908.99.00	--Other	0%	0
2909	ETHERS, ETHER-ALCOHOLS, ETHER-PHENOLS, ETHER-ALCOHOL-PHENOLS, ALCOHOL PEROXIDES, ETHER PEROXIDES, KETONE PEROXIDES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AND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2909.1	-Acyclic ethers and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2909.11.00	--Diethyl ether	0%	0
2909.19.00	--Other	0%	0
2909.20.00	-Cyclanic, cyclenic or cycloterpenic ethers and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0%	0
2909.30.00	-Aromatic ethers and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0%	0
2909.4	-Ether-alcohols and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2909.41.00	--2,2'-Oxydiethanol (diethylene glycol, digol)	5%	0
2909.43.00	--Monobutyl ethers of ethylene glycol or of diethylene glycol	5%	0
2909.44.00	--Other monoalkylethers of ethylene glycol or of diethylene glycol	5%	0
2909.49.00	--Other	5%	0
2909.50	-Ether-phenols, ether-alcohol-phenols and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2909.50.10	---Ethylene oxide derivatives	5%	0
2909.50.90	---Other	0%	0
2909.60	-Alcohol peroxides, ether peroxides, ketone peroxides and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2909.60.10	---Goods, as follows: (a) ethylene oxide derivatives; (b) di-t-butyl peroxide; (c) ethyl methyl ketone peroxide; (d) t-butyl hydroperoxide	5%	0
2909.60.90	---Other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2910	EPOXIDES, EPOXYALCOHOLS, EPOXYPHENOLS AND EPOXYETHERS, WITH A THREE-MEMBERED RING, AND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2910.10.00	-Oxirane (ethylene oxide)	0%	0
2910.20.00	-Methyloxirane (propylene oxide)	0%	0
2910.30.00	-1-Chloro-2,3-epoxypropane (epichlorohydrin)	0%	0
2910.40.00	-Dieldrin (ISO, INN)	0%	0
2910.90.00	-Other	0%	0
2911.00.00	ACETALS AND HEMIACETALS, WHETHER OR NOT WITH OTHER OXYGEN FUNCTION, AND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0%	0
2912	ALDEHYDES, WHETHER OR NOT WITH OTHER OXYGEN FUNCTION; CYCLIC POLYMERS OF ALDEHYDES; PARAFORMALDEHYDE:		
2912.1	-Acyclic aldehydes without other oxygen function:		
2912.11.00	--Methanal (formaldehyde)	5%	0
2912.12.00	--Ethanal (acetaldehyde)	5%	0
2912.19.00	--Other	0%	0
2912.2	-Cyclic aldehydes without other oxygen function:		
2912.21.00	--Benzaldehyde	0%	0
2912.29.00	--Other	0%	0
2912.4	-Aldehyde-alcohols, aldehyde-ethers, aldehyde-phenols and aldehydes with other oxygen function:		
2912.41.00	--Vanillin (4-hydroxy-3-methoxybenzaldehyde)	0%	0
2912.42.00	--Ethylvanillin (3-ethoxy-4-hydroxybenzaldehyde)	0%	0
2912.49.00	--Other	0%	0
2912.50.00	-Cyclic polymers of aldehydes	0%	0
2912.60.00	-Paraformaldehyde	5%	0
2913.00.00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OF PRODUCTS OF 2912	0%	0
2914	KETONES AND QUINONES, WHETHER OR NOT WITH OTHER OXYGEN FUNCTION, AND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2914.1	-Acyclic ketones without other oxygen function:		
2914.11.00	--Acetone	5%	0
2914.12.00	--Butanone (methyl ethyl ketone)	0%	0
2914.13.00	--4-Methylpentan-2-one (methyl isobutyl ketone)	0%	0
2914.19.00	--Other	0%	0
2914.2	-Cyclanic, cyclenic or cycloterpenic ketones without other oxygen function:		
2914.22.00	--Cyclohexanone and methylcyclohexanones	0%	0
2914.23.00	--Ionones and methylionones	0%	0
2914.29.00	--Other	0%	0
2914.3	-Aromatic ketones without other oxygen function:		
2914.31.00	--Phenylacetone (phenylpropan-2-one)	0%	0
2914.39.00	--Other	0%	0
2914.40	-Ketone-alcohols and ketone-aldehydes:		
2914.40.10	---4-Hydroxy-4-methylpentan-2-one (diacetone alcohol)	5%	0
2914.40.90	---Other	0%	0
2914.50.00	-Ketone-phenols and ketones with other oxygen function	0%	0
2914.6	-Quinones:		
2914.61.00	--Anthraquinone	0%	0
2914.69.00	--Other	0%	0
2914.70.00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0%	0
2915	SATURATED ACYCLIC MONOCARBOXYLIC ACIDS AND THEIR ANHYDRIDES, HALIDES, PEROXIDES AND PEROXYACIDS;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2915.1	-Formic acid, its salts and esters:		
2915.11.00	--Formic acid	0%	0
2915.12.00	--Salts of formic acid	0%	0
2915.13.00	--Esters of formic acid	5%	0
2915.2	-Acetic acid and its salts; acetic anhydride:		
2915.21.00	--Acetic acid	5%	0
2915.24.00	--Acetic anhydride	5%	0
2915.29.00	--Other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2915.3	-Esters of acetic acid:		
2915.31.00	--Ethyl acetate	5%	0
2915.32.00	--Vinyl acetate	5%	0
2915.33.00	--n-Butylacetate	5%	0
2915.36.00	--Dinoseb (ISO) acetate	5%	0
2915.39	--Other:		
2915.39.10	---Glycerol triacetate	0%	0
2915.39.20	---2-Ethoxyethyl acetate	5%	0
2915.39.90	---Other	5%	0
2915.40.00	-Mono-, di- or trichloroacetic acids, their salts and esters	0%	0
2915.50.00	-Propionic acid, its salts and esters	0%	0
2915.60.00	-Butanoic acids, pentanoic acids, their salts and esters	0%	0
2915.70.00	-Palmitic acid, stearic acid, their salts and esters	5%	0
2915.90.00	-Other	5%	0
2916	UNSATURATED ACYCLIC MONOCARBOXYLIC ACIDS, CYCLIC MONOCARBOXYLIC ACIDS, THEIR ANHYDRIDES, HALIDES, PEROXIDES AND PEROXYACIDS;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2916.1	-Unsaturated acyclic monocarboxylic acids, their anhydrides, halides, peroxides, peroxyacids and their derivatives:		
2916.11.00	--Acrylic acid and its salts	0%	0
2916.12.00	--Esters of acrylic acid	0%	0
2916.13.00	--Methacrylic acid and its salts	0%	0
2916.14.00	--Esters of methacrylic acid	0%	0
2916.15.00	--Oleic, linoleic or linolenic acids, their salts and esters	5%	0
2916.16.00	--Binacryl (ISO)	0%	0
2916.19	--Other:		
2916.19.10	---Acids containing not less than 8 and not more than 22 carbon atoms, and their salts and esters	5%	0
2916.19.90	---Other	0%	0
2916.20.00	-Cyclanic, cyclenic or cycloterpenic monocarboxylic acids, their anhydrides, halides, peroxides, peroxyacids and their derivatives	0%	0
2916.3	-Aromatic monocarboxylic acids, their anhydrides, halides, peroxides, peroxyacids and their derivatives:		
2916.31.00	--Benzoic acid, its salts and esters	0%	0
2916.32.00	--Benzoyl peroxide and benzoyl chloride	0%	0
2916.34.00	--Phenylacetic acid and its salts	0%	0
2916.39.00	--Other	0%	0
2917	POLYCARBOXYLIC ACIDS, THEIR ANHYDRIDES, HALIDES, PEROXIDES AND PEROXYACIDS;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2917.1	-Acyclic polycarboxylic acids, their anhydrides, halides, peroxides, peroxyacids and their derivatives:		
2917.11.00	--Oxalic acid, its salts and esters	0%	0
2917.12.00	--Adipic acid, its salts and esters	0%	0
2917.13.00	--Azelaic acid, sebacic acid, their salts and esters	0%	0
2917.14.00	--Maleic anhydride	0%	0
2917.19.00	--Other	0%	0
2917.20.00	-Cyclanic, cyclenic or cycloterpenic polycarboxylic acids, their anhydrides, halides, peroxides, peroxyacids and their derivatives	0%	0
2917.3	-Aromatic polycarboxylic acids, their anhydrides, halides, peroxides, peroxyacids and their derivatives:		
2917.32.00	--Dioctyl orthophthalates	5%	0
2917.33.00	--Dinonyl or didecyl orthophthalates	5%	0
2917.34.00	--Other esters of orthophthalic acid	0%	0
2917.35.00	--Phthalic anhydride	5%	0
2917.36.00	--Terephthalic acid and its salts	0%	0
2917.37.00	--Dimethyl terephthalate	0%	0
2917.39.00	--Other	5%	0
2918	CARBOXYLIC ACIDS WITH ADDITIONAL OXYGEN FUNCTION AND THEIR ANHYDRIDES, HALIDES, PEROXIDES AND PEROXYACIDS;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2918.1	-Carboxylic acids with alcohol function but without other oxygen function, their anhydrides, halides, peroxides, peroxyacids and their derivatives:		
2918.11.00	--Lactic acid, its salts and esters	0%	0
2918.12.00	--Tartaric acid	0%	0
2918.13.00	--Salts and esters of tartaric acid	0%	0
2918.14.00	--Citric acid	0%	0
2918.15.00	--Salts and esters of citric acid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2918.16.00	--Gluconic acid, its salts and esters	0%	0
2918.18.00	--Chlorobenzilate (ISO)	0%	0
2918.19.00	--Other	0%	0
2918.2	-Carboxylic acids with phenol function but without other oxygen function, their anhydrides, halides, peroxides, peroxyacids and their derivatives:		
2918.21.00	--Salicylic acid and its salts	0%	0
2918.22.00	--O-Acetylsalicylic acid, its salts and esters	0%	0
2918.23.00	--Other esters of salicylic acid and their salts	0%	0
2918.29.00	--Other	0%	0
2918.30.00	-Carboxylic acids with aldehyde or ketone function but without other oxygen function, their anhydrides, halides, peroxides, peroxyacids and their derivatives	0%	0
2918.9	-Other:		
2918.91.00	--2,4,5-T (ISO) (2,4,5-trichlorophenoxyacetic acid), its salts and esters	5%	0
2918.99.00	--Other	5%	0
2919	PHOSPHORIC ESTERS AND THEIR SALTS, INCLUDING LACTOPHOSPHATES;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2919.10.00	-Tris(2,3-dibromopropyl) phosphate	0%	0
2919.90.00	-Other	0%	0
2920	ESTERS OF OTHER INORGANIC ACIDS OF NON-METALS (EXCLUDING ESTERS OF HYDROGEN HALIDES) AND THEIR SALTS;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2920.1	-Thiophosphoric esters (phosphorothioates) and their salts;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2920.11.00	--Parathion (ISO) and parathion-methyl (ISO) (methyl-parathion)	0%	0
2920.19.00	--Other	0%	0
2920.90.00	-Other	0%	0
2921	AMINE-FUNCTION COMPOUNDS:		
2921.1	-Acyclic monoamines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2921.11.00	--Methylamine, di- or trimethylamine and their salts	5%	0
2921.19.00	--Other	5%	0
2921.2	-Acyclic polyamines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2921.21.00	--Ethylenediamine and its salts	0%	0
2921.22.00	--Hexamethylenediamine and its salts	0%	0
2921.29.00	--Other	0%	0
2921.30.00	-Cyclanic, cyclenic or cycloterpenic mono- or polyamines,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0%	0
2921.4	-Aromatic monoamines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2921.41.00	--Aniline and its salts	0%	0
2921.42.00	--Aniline derivatives and their salts	0%	0
2921.43	--Toluidines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2921.43.10	---Toluidine derivatives containing fluoro, nitro and propyl groups	5%	0
2921.43.90	---Other	0%	0
2921.44.00	--Diphenylamine and its derivatives; salts thereof	0%	0
2921.45.00	--1-Naphthylamine (alpha-naphthylamine), 2-naphthylamine (beta-naphthylamine)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0%	0
2921.46.00	--Amfetamine (INN), benzfetamine (INN), dexamfetamine (INN), etilamfetamine (INN), fencamfetamine (INN), lefetamine (INN), levamfetamine (INN), mefenorex (INN) and phentermine (INN); salts thereof	0%	0
2921.49.00	--Other	0%	0
2921.5	-Aromatic polyamines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2921.51.00	--o-, m-, p-Phenylenediamine, diaminotoluenes,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0%	0
2921.59.00	--Other	0%	0
2922	OXYGEN-FUNCTION AMINO-COMPOUNDS:		
2922.1	-Amino-alcohols, other than those containing more than one kind of oxygen function, their ethers and esters; salts thereof:		
2922.11.00	--Monoethanolamine and its salts	0%	0
2922.12.00	--Diethanolamine and its salts	0%	0
2922.13.00	--Triethanolamine and its salts	5%	0
2922.14.00	--Dextropropoxyphene (INN) and its salts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2922.19.00	--Other	0%	0
2922.2	-Amino-naphthols and other amino-phenols, other than those containing more than one kind of oxygen function, their ethers and esters; salts thereof:		
2922.21.00	--Aminohydroxynaphthalenesulphonic acids and their salts	0%	0
2922.29.00	--Other	0%	0
2922.3	-Amino-aldehydes, amino-ketones and amino-quinones, other than those containing more than one kind of oxygen function; salts thereof:		
2922.31.00	-Amfepramone (INN), methadone (INN) and normethadone (INN); salts thereof	0%	0
2922.39.00	--Other	0%	0
2922.4	-Amino-acids, other than those containing more than one kind of oxygen function, and their esters; salts thereof:		
2922.41.00	--Lysine and its esters; salts thereof	0%	0
2922.42.00	--Glutamic acid and its salts	0%	0
2922.43.00	--Anthranilic acid and its salts	0%	0
2922.44.00	--Tilidine (INN) and its salts	0%	0
2922.49.00	--Other	0%	0
2922.50.00	-Amino-alcohol-phenols, amino-acid-phenols and other amino-compounds with oxygen function	0%	0
2923	QUATERNARY AMMONIUM SALTS AND HYDROXIDES; LECITHINS AND OTHER PHOSPHOAMINOLIPIDS,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2923.10.00	-Choline and its salts	0%	0
2923.20.00	-Lecithins and other phosphoaminolipids	0%	0
2923.90.00	-Other	0%	0
2924	CARBOXYAMIDE-FUNCTION COMPOUNDS; AMIDE-FUNCTION COMPOUNDS OF CARBONIC ACID:		
2924.1	-Acyclic amides (including acyclic carbamates)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2924.11.00	--Meprobamate (INN)	0%	0
2924.12.00	--Fluoroacetamide (ISO), monocrotophos (ISO) and phosphamidon (ISO)	0%	0
2924.19.00	--Other	0%	0
2924.2	-Cyclic amides (including cyclic carbamates)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2924.21.00	--Ureines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0%	0
2924.23.00	--2-Acetamidobenzoic acid (N-acetylanthranilic acid) and its salts	0%	0
2924.24.00	--Ethinamate (INN)	0%	0
2924.29.00	--Other	0%	0
2925	CARBOXYIMIDE-FUNCTION COMPOUNDS (INCLUDING SACCHARIN AND ITS SALTS) AND IMINE-FUNCTION COMPOUNDS:		
2925.1	-Imides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2925.11.00	--Saccharin and its salts	0%	0
2925.12.00	--Glutethimide (INN)	0%	0
2925.19.00	--Other	0%	0
2925.2	-Imines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2925.21.00	--Chlordimeform (ISO)	0%	0
2925.29.00	--Other	0%	0
2926	NITRILE-FUNCTION COMPOUNDS:		
2926.10.00	-Acrylonitrile	0%	0
2926.20.00	-1-Cyanoguanidine (dicyandiamide)	0%	0
2926.30.00	-Fenproporex (INN) and its salts; methadone (INN) intermediate (4-cyano-2-dimethylamino-4,4-diphenylbutane)	0%	0
2926.90.00	-Other	0%	0
2927.00.00	DIAZO-, AZO- OR AZOXY-COMPOUNDS	0%	0
2928.00.00	ORGANIC DERIVATIVES OF HYDRAZINE OR OF HYDROXYLAMINE	0%	0
2929	COMPOUNDS WITH OTHER NITROGEN FUNCTION:		
2929.10.00	-Isocyanates	0%	0
2929.90.00	-Other	0%	0
2930	ORGANO-SULPHUR COMPOUNDS:		
2930.20.00	-Thiocarbamates and dithiocarbamates	0%	0
2930.30.00	-Thiuram mono-, di- or tetrasulphides	0%	0
2930.40.00	-Methionine	0%	0
2930.50.00	-Captafol (ISO) and methamidophos (ISO)	0%	0
2930.90.00	-Other	0%	0
2931	OTHER ORGANO-INORGANIC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COMPOUNDS:		
2931.10.00	-Tetramethyl lead and tetraethyl lead	0%	0
2931.20.00	-Tributyltin compounds	0%	0
2931.90	-Other:		
2931.90.10	---Glycine derivatives containing phosphono groups	5%	0
2931.90.90	---Other	0%	0
2932	HETEROCYCLIC COMPOUNDS WITH OXYGEN HETERO-ATOM(S) ONLY:		
2932.1	-Compounds containing an unfused furan ring (whether or not hydrogenated) in the structure:		
2932.11.00	--Tetrahydrofuran	0%	0
2932.12.00	--2-Furaldehyde (furfuraldehyde)	0%	0
2932.13.00	--Furfuryl alcohol and tetrahydrofurfuryl alcohol	0%	0
2932.19.00	--Other	0%	0
2932.20.00	-Lactones	0%	0
2932.9	-Other:		
2932.91.00	--Isosafrole	0%	0
2932.92.00	--1-(1,3-Benzodioxol-5-yl)propan-2-one	0%	0
2932.93.00	--Piperonal	0%	0
2932.94.00	--Safrole	0%	0
2932.95.00	--Tetrahydrocannabinols (all isomers)	0%	0
2932.99.00	--Other	0%	0
2933	HETEROCYCLIC COMPOUNDS WITH NITROGEN HETERO-ATOM(S) ONLY:		
2933.1	-Compounds containing an unfused pyrazole ring (whether or not hydrogenated) in the structure:		
2933.11.00	--Phenazone (antipyrin) and its derivatives	0%	0
2933.19.00	--Other	0%	0
2933.2	-Compounds containing an unfused imidazole ring (whether or not hydrogenated) in the structure:		
2933.21.00	--Hydantoin and its derivatives	0%	0
2933.29.00	--Other	0%	0
2933.3	-Compounds containing an unfused pyridine ring (whether or not hydrogenated) in the structure:		
2933.31.00	--Pyridine and its salts	0%	0
2933.32.00	--Piperidine and its salts	0%	0
2933.33.00	--Alfentanil (INN), anileridine (INN), bezitramide (INN), bromazepam (INN), difenoxin (INN), diphenoxylate (INN), dipipanone (INN), fentanyl (INN), ketobemidone (INN), methylphenidate (INN), pentazocine (INN), pethidine (INN), pethidine (INN) intermediate A, phencyclidine (INN), (PCP), phenoperidine (INN), pipradrol (INN), piritramide (INN), propiram (INN) and trimeperidine (INN); salts thereof	0%	0
2933.39.00	--Other	0%	0
2933.4	-Compounds containing in the structure a quinoline or isoquinoline ring-system (whether or not hydrogenated), not further fused:		
2933.41.00	--Levorphanol (INN) and its salts	0%	0
2933.49.00	--Other	0%	0
2933.5	-Compounds containing a pyrimidine ring (whether or not hydrogenated) or piperazine ring in the structure:		
2933.52.00	--Malonylurea (barbituric acid) and its salts	0%	0
2933.53.00	--Allobarbital (INN), amobarbital (INN), barbital (INN), butalbital (INN), butobarbital, cyclobarbital (INN), methylphenobarbital (INN), pentobarbital (INN), phenobarbital (INN), secbutabarbital (INN), secobarbital (INN) and vinylbital (INN); salts thereof	0%	0
2933.54.00	--Other derivatives of malonylurea (barbituric acid); salts thereof	0%	0
2933.55.00	--Loprazolam (INN, mecloqualone (INN), methaqualone (INN) and zipeprol (INN); salts thereof	0%	0
2933.59.00	--Other	0%	0
2933.6	-Compounds containing an unfused triazine ring (whether or not hydrogenated) in the structure:		
2933.61.00	--Melamine	0%	0
2933.69.00	--Other	0%	0
2933.7	-Lactams:		
2933.71.00	--6-Hexanelactam (epsilon-caprolactam)	0%	0
2933.72.00	--Clobazam (INN) and methyprylon (INN)	0%	0
2933.79.00	--Other lactams	0%	0
2933.9	-Other: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2933.91.00	--Alprazolam (INN), camazepam (INN), chlordiazepoxide (INN), clonazepam (INN), chlorazepate, delorazepam (INN), diazepam (INN), estazolam (INN), ethyl loflazepate (INN), fludiazepam (INN), flunitrazepam (INN), flurazepam (INN), halazepam (INN), lorazepam (INN), lormetazepam (INN), mazindol (INN), medazepam (INN), midazolam (INN), nimetazepam (INN), nitrazepam (INN), nordazepam (INN), oxazepam (INN), pinazepam (INN), prazepam (INN), pyrovalerone (INN), temazepam (INN), tetrazepam (INN), and triazolam (INN); salts thereof	0%	0
2933.99.00	--Other	0%	0
2934	NUCLEIC ACIDS AND THEIR SALTS,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OTHER HETEROCYCLIC COMPOUNDS:		
2934.10.00	-Compounds containing an unfused thiazole ring (whether or not hydrogenated) in the structure	0%	0
2934.20.00	-Compounds containing in the structure a benzothiazole ring-system (whether or not hydrogenated), not further fused	0%	0
2934.30.00	-Compounds containing in the structure a phenothiazine ring-system (whether or not hydrogenated), not further fused	0%	0
2934.9	-Other:		
2934.91.00	--Aminorex (INN), brotizolam (INN), clotiazepam (INN), cloxazolam (INN), dextromoramide (INN), haloxazolam (INN), ketazolam (INN), mesocarb (INN), oxazolam (INN), pemoline (INN), phendimetrazine (INN), phenmetrazine (INN) and sufentanil (INN); salts thereof	0%	0
2934.99.00	--Other	0%	0
2935.00.00	SULPHONAMIDES	0%	0
2936	PROVITAMINS AND VITAMINS, NATURAL OR REPRODUCED BY SYNTHESIS (INCLUDING NATURAL CONCENTRATES), DERIVATIVES THEREOF USED PRIMARILY AS VITAMINS, AND INTERMIXTURES OF THE FOREGOING, WHETHER OR NOT IN ANY SOLVENT:		
2936.2	-Vitamins and their derivatives, unmixed:		
2936.21.00	--Vitamins A and their derivatives	0%	0
2936.22.00	--Vitamin B1 and its derivatives	0%	0
2936.23.00	--Vitamin B2 and its derivatives	0%	0
2936.24.00	--D- or DL-Pantothenic acid (Vitamin B3 or Vitamin B5) and its derivatives	0%	0
2936.25.00	--Vitamin B6 and its derivatives	0%	0
2936.26.00	--Vitamin B12 and its derivatives	0%	0
2936.27.00	--Vitamin C and its derivatives	0%	0
2936.28.00	--Vitamin E and its derivatives	0%	0
2936.29.00	--Other vitamins and their derivatives	0%	0
2936.90.00	-Other, including natural concentrates	0%	0
2937	HORMONES, PROSTAGLANDINS, THROMBOXANES AND LEUKOTRIENES, NATURAL OR REPRODUCED BY SYNTHESIS; DERIVATIVES AND STRUCTURAL ANALOGUES THEREOF, INCLUDING CHAIN MODIFIED POLYPEPTIDES, USED PRIMARILY AS HORMONES:		
2937.1	-Polypeptide hormones, protein hormones and glycoprotein hormones, their derivatives and structural analogues:		
2937.11.00	--Somatotropin, its derivatives and structural analogues	0%	0
2937.12.00	--Insulin and its salts	0%	0
2937.19.00	--Other	0%	0
2937.2	-Steroidal hormones, their derivatives and structural analogues:		
2937.21.00	--Cortisone, hydrocortisone, prednisone (dehydrocortisone) and prednisolone (dehydrohydrocortisone)	0%	0
2937.22.00	--Halogenated derivatives of corticosteroidal hormones	0%	0
2937.23.00	--Oestrogens and progestogens	0%	0
2937.29.00	--Other	0%	0
2937.50	-Prostaglandins, thromboxanes and leukotrienes, their derivatives and structural analogues:		
2937.50.10	---Based on the carboxylic acids of 2918.9	5%	0
2937.50.90	---Other	0%	0
2937.90.00	-Other	0%	0
2938	GLYCOSIDES, NATURAL OR REPRODUCED BY SYNTHESIS, AND THEIR SALTS, ETHERS, ESTERS AND OTHER DERIVATIVES: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2938.10.00	-Rutoside (rutin) and its derivatives	0%	0
2938.90.00	-Other	0%	0
2939	VEGETABLE ALKALOIDS, NATURAL OR REPRODUCED BY SYNTHESIS, AND THEIR SALTS, ETHERS, ESTERS AND OTHER DERIVATIVES:		
2939.1	-Alkaloids of opium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2939.11.00	--Concentrates of poppy straw; buprenorphine (INN), codeine, dihydrocodeine (INN), ethylmorphine, etorphine (INN), heroin, hydrocodone (INN), hydromorphone (INN), morphine, nicomorphine (INN), oxycodone (INN), oxymorphone (INN), pholcodine (INN), thebacon (INN) and thebaine; salts thereof	0%	0
2939.19.00	--Other	0%	0
2939.20.00	-Alkaloids of cinchona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0%	0
2939.30.00	-Caffeine and its salts	0%	0
2939.4	-Ephedrines and their salts:		
2939.41.00	--Ephedrine and its salts	0%	0
2939.42.00	--Pseudoephedrine (INN) and its salts	0%	0
2939.43.00	--Cathine (INN) and its salts	0%	0
2939.44.00	--Norephedrine and its salts	0%	0
2939.49.00	--Other	0%	0
2939.5	-Theophylline and aminophylline (theophylline-ethylenediamine)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2939.51.00	--Fenetylline (INN) and its salts	0%	0
2939.59.00	--Other	0%	0
2939.6	-Alkaloids of rye ergot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2939.61.00	--Ergometrine (INN) and its salts	0%	0
2939.62.00	--Ergotamine (INN) and its salts	0%	0
2939.63.00	--Lysergic acid and its salts	0%	0
2939.69.00	--Other	0%	0
2939.9	-Other:		
2939.91.00	--Cocaine, ecgonine, levometamfetamine, metamfetamine (INN), metafetamine racemate; salts, esters and other derivatives thereof	0%	0
2939.99.00	--Other	0%	0
2940	SUGARS, CHEMICALLY PURE, OTHER THAN SUCROSE, LACTOSE, MALTOSE, GLUCOSE AND FRUCTOSE; SUGAR ETHERS, SUGAR ACETALS AND SUGAR ESTERS, AND THEIR SALTS, OTHER THAN PRODUCTS OF 2937, 2938 OR 2939:		
2940.00.10	---Polyols being polyhydroxyether compounds containing 2 or more hydroxyl groups per molecule and containing not less than 50% by weight of reacted propylene oxide, other than polyesters	5%	0
2940.00.90	---Other	0%	0
2941	ANTIBIOTICS:		
2941.10.00	-Penicillins and their derivatives with a penicillanic acid structure; salts thereof	0%	0
2941.20.00	-Streptomycins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0%	0
2941.30.00	-Tetracyclines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0%	0
2941.40.00	-Chloramphenicol and its derivatives; salts thereof	0%	0
2941.50.00	-Erythromycin and its derivatives; salts thereof	0%	0
2941.90.00	-Other	0%	0
2942.00.00	OTHER ORGANIC COMPOUNDS	0%	0
30	PHARMACEUTICAL PRODUCTS		
3001	GLANDS AND OTHER ORGANS FOR ORGANO-THERAPEUTIC USES, DRIED, WHETHER OR NOT POWDERED; EXTRACTS OF GLANDS OR OTHER ORGANS OR OF THEIR SECRETIONS FOR ORGANO-THERAPEUTIC USES; HEPARIN AND ITS SALTS; OTHER HUMAN OR ANIMAL SUBSTANCES PREPARED FOR THERAPEUTIC OR PROPHYLACTIC US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3001.20.00	-Extracts of glands or other organs or of their secretions	0%	0
3001.90.00	-Other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3002	HUMAN BLOOD; ANIMAL BLOOD PREPARED FOR THERAPEUTIC, PROPHYLACTIC OR DIAGNOSTIC USES; ANTISERA, OTHER BLOOD FRACTIONS AND IMMUNOLOGICAL PRODUCTS, WHETHER OR NOT MODIFIED OR OBTAINED BY MEANS OF BIOTECHNOLOGICAL PROCESSES; VACCINES, TOXINS, CULTURES OF MICRO-ORGANISMS (EXCLUDING YEASTS) AND SIMILAR PRODUCTS:		
3002.10	-Antisera, other blood fractions and immunological products, whether or not modified or obtained by means of biotechnological processes:		
3002.10.10	---Goods, being unmodified immunological products, as follows: (a) polyethers in the primary forms described in Note 6 to Chapter 39; (b) natural polymers in the primary forms described in Note 6 to Chapter 39	5%	0
3002.10.90	---Other	0%	0
3002.20.00	-Vaccines for human medicine	0%	0
3002.30.00	-Vaccines for veterinary medicine	0%	0
3002.90.00	-Other	0%	0
3003	MEDICAMENTS (EXCLUDING GOODS OF 3002, 3005 OR 3006) CONSISTING OF TWO OR MORE CONSTITUENTS WHICH HAVE BEEN MIXED TOGETHER FOR THERAPEUTIC OR PROPHYLACTIC USES, NOT PUT UP IN MEASURED DOSES OR IN FORMS OR PACKINGS FOR RETAIL SALE:		
3003.10.00	-Containing penicillins or derivatives thereof, with a penicillanic acid structure, or streptomycins or their derivatives	0%	0
3003.20.00	-Containing other antibiotics	0%	0
3003.3	-Containing hormones or other products of 2937 but not containing antibiotics:		
3003.31.00	--Containing insulin	0%	0
3003.39.00	--Other	0%	0
3003.40.00	-Containing alkaloids or derivatives thereof but not containing hormones or other products of 2937 or antibiotics	0%	0
3003.90.00	-Other	0%	0
3004	MEDICAMENTS (EXCLUDING GOODS OF3002, 3005 OR 3006) CONSISTING OF MIXED OR UNMIXED PRODUCTS FOR THERAPEUTIC OR PROPHYLACTIC USES, PUT UP IN MEASURED DOSES (INCLUDING THOSE IN THE FORM OF TRANSDERMAL ADMINISTRATION SYSTEMS) OR IN FORMS OR PACKINGS FOR RETAIL SALE:		
3004.10.00	-Containing penicillins or derivatives thereof, with a penicillanic acid structure, or streptomycins or their derivatives	0%	0
3004.20.00	-Containing other antibiotics	0%	0
3004.3	-Containing hormones or other products of 2937 but not containing antibiotics:		
3004.31.00	--Containing insulin	0%	0
3004.32.00	--Containing adrenal corticosteroid hormones, their derivatives or structural analogues	0%	0
3004.39.00	--Other	0%	0
3004.40.00	-Containing alkaloids or derivatives thereof but not containing hormones, other products of 2937 or antibiotics	0%	0
3004.50.00	-Other medicaments containing vitamins or other products of 2936	0%	0
3004.90.00	-Other	0%	0
3005	WADDING, GAUZE, BANDAGES AND SIMILAR ARTICLES (FOR EXAMPLE, DRESSINGS, ADHESIVE PLASTERS, POULTICES), IMPREGNATED OR COATED WITH PHARMACEUTICAL SUBSTANCES OR PUT UP IN FORMS OR PACKINGS FOR RETAIL SALE FOR MEDICAL, SURGICAL, DENTAL OR VETERINARY PURPOSES:		
3005.10.00	-Adhesive dressings and other articles having an adhesive layer	5%	0
3005.90	-Other:		
3005.90.10	---Wadding, including cotton wool and absorbent cotton	5%	0
3005.90.90	---Other	5%	0
3006	PHARMACEUTICAL GOODS SPECIFIED IN NOTE 4 TO THIS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CHAPTER:		
3006.10	-Sterile surgical catgut, similar sterile suture materials (including sterile absorbable surgical or dental yarns) and sterile tissue adhesives for surgical wound closure; sterile laminaria and sterile laminaria tents; sterile absorbable surgical or dental haemostatics; sterile surgical or dental adhesion barriers, whether or not absorbable:		
3006.10.1	---Sterile surgical or dental adhesion barriers, whether or not absorbable, of plastics:		
3006.10.11	----Of polymers of vinyl chloride, containing by weight not less than 6% of plasticisers, in the forms described in 3920	5%	0
3006.10.12	----Of plastics, in the forms described in 3920, as follows: (a) of polymers of ethylene; (b) of polymers of styrene; (c) of polymers of vinyl chloride, NSA; (d) of poly(vinyl butyral); (e) of polymides	5%	0
3006.10.13	----Of plastics, in the forms described in 3920, as follows: (a) of cellulose or its chemical derivatives; (b) of amino-resins; (c) of phenolic resins	0%	0
3006.10.14	----Of plastics, in the forms described in 3921, as follows: (a) of polymers of styrene; (b) of vinyl chloride; (c) of polyurethanes	5%	0
3006.10.15	----Of cellulose or its chemical derivatives, coated, covered or laminated, NSA	0%	0
3006.10.19	----Of other plastics	5%	0
3006.10.2	---Sterile surgical or dental adhesion barriers, whether or not absorbable, of textile fabrics:		
3006.10.21	----In the form of knitted or crocheted fabrics containing by weight 5% or more of elastomeric yarn or rubber thread	5%	0
3006.10.22	----Of other knitted or crocheted fabrics of a width not exceeding 30 cm	5%	0
3006.10.29	----Of other knitted or crocheted fabrics	5%	0
3006.10.90	---Other	0%	0
3006.20.00	-Blood-grouping reagents	0%	0
3006.30.00	-Opacifying preparations for X-ray examinations; diagnostic reagents designed to be administered to the patient	0%	0
3006.40.00	-Dental cements and other dental fillings; bone reconstruction cements	5%	0
3006.50.00	-First-aid boxes and kits	0%	0
3006.60.00	-Chemical contraceptive preparations based on hormones, on other products of 2937 or on spermicides	0%	0
3006.70.00	-Gel preparations designed to be used in human or veterinary medicine as a lubricant for parts of the body for surgical operations or physical examinations or as a coupling agent between the body and medical instruments	5%	0
3006.9	-Other:		
3006.91.00	--Appliances identifiable for ostomy use	5%	0
3006.92	--Waste pharmaceuticals:		
3006.92.10	---Goods, as follows: (a) of goods of 3005.90.10; (b) of goods of 3006.40.00	5%	0
3006.92.20	---Of goods of 3005, NSA	5%	0
3006.92.30	---Of goods of Chapter 30, NSA	0%	0
3006.92.90	---Other	5%	0
31	FERTILISERS		
3101.00.00	ANIMAL OR VEGETABLE FERTILISERS, WHETHER OR NOT MIXED TOGETHER OR CHEMICALLY TREATED; FERTILISERS PRODUCED BY THE MIXING OR CHEMICAL TREATMENT OF ANIMAL OR VEGETABLE PRODUCTS	0%	0
3102	MINERAL OR CHEMICAL FERTILISERS, NITROGENOUS:		
3102.10.00	-Urea, whether or not in aqueous solution	0%	0
3102.2	-Ammonium sulphate; double salts and mixtures of ammonium sulphate and ammonium nitrate:		
3102.21.00	--Ammonium sulphate	0%	0
3102.29.00	--Other	0%	0
3102.30.00	-Ammonium nitrate, whether or not in aqueous solution	0%	0
3102.40.00	-Mixtures of ammonium nitrate with calcium carbonate or other inorganic non-fertilising substances	0%	0
3102.50.00	-Sodium nitrate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3102.60.00	-Double salts and mixtures of calcium nitrate and ammonium nitrate	0%	0
3102.80.00	-Mixtures of urea and ammonium nitrate in aqueous or ammoniacal solution	0%	0
3102.90.00	-Other, including mixtures not specified in the foregoing subheadings	0%	0
3103	MINERAL OR CHEMICAL FERTILISERS, PHOSPHATIC:		
3103.10.00	-Superphosphates	0%	0
3103.90.00	-Other	0%	0
3104	MINERAL OR CHEMICAL FERTILISERS, POTASSIC:		
3104.20.00	-Potassium chloride	0%	0
3104.30.00	-Potassium sulphate	0%	0
3104.90.00	-Other	0%	0
3105	MINERAL OR CHEMICAL FERTILISERS CONTAINING TWO OR THREE OF THE FERTILISING ELEMENTS NITROGEN, PHOSPHORUS AND POTASSIUM; OTHER FERTILISERS; GOODS OF THIS CHAPTER IN TABLETS OR SIMILAR FORMS OR IN PACKAGES OF A GROSS WEIGHT NOT EXCEEDING 10 KG:		
3105.10.00	-Goods of this Chapter in tablets or similar forms or in packages of a gross weight not exceeding 10 kg	0%	0
3105.20.00	-Mineral or chemical fertilisers containing the three fertilising elements nitrogen, phosphorus and potassium	0%	0
3105.30.00	-Diammonium hydrogenorthophosphate (diammonium phosphate)	0%	0
3105.40.00	-Ammonium dihydrogenorthophosphate (monoammonium phosphate) and mixtures thereof with diammonium hydrogenorthophosphate (diammonium phosphate)	0%	0
3105.5	-Other mineral or chemical fertilisers containing the two fertilising elements nitrogen and phosphorus:		
3105.51.00	--Containing nitrates and phosphates	0%	0
3105.59.00	--Other	0%	0
3105.60.00	-Mineral or chemical fertilisers containing the two fertilising elements phosphorus and potassium	0%	0
3105.90.00	-Other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32	TANNING OR DYEING EXTRACTS; TANNINS AND THEIR DERIVATIVES; DYES, PIGMENTS AND OTHER COLOURING MATTER; PAINTS AND VARNISHES; PUTTY AND OTHER MASTICS; INKS		
3201	TANNING EXTRACTS OF VEGETABLE ORIGIN; TANNINS AND THEIR SALTS, ETHERS, ESTERS AND OTHER DERIVATIVES:		
3201.10.00	-Quebracho extract	0%	0
3201.20.00	-Wattle extract	0%	0
3201.90.00	-Other	0%	0
3202	SYNTHETIC ORGANIC TANNING SUBSTANCES; INORGANIC TANNING SUBSTANCES; TANNING PREPARATIONS, WHETHER OR NOT CONTAINING NATURAL TANNING SUBSTANCES; ENZYMATIC PREPARATIONS FOR PRE-TANNING:		
3202.10.00	-Synthetic organic tanning substances	0%	0
3202.90.00	-Other	0%	0
3203.00.00	COLOURING MATTER OF VEGETABLE OR ANIMAL ORIGIN (INCLUDING DYEING EXTRACTS BUT EXCLUDING ANIMAL BLACK),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PREPARATIONS AS SPECIFIED IN NOTE 3 TO THIS CHAPTER BASED ON COLOURING MATTER OF VEGETABLE OR ANIMAL ORIGIN	0%	0
3204	SYNTHETIC ORGANIC COLOURING MATTER,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PREPARATIONS AS SPECIFIED IN NOTE 3 TO THIS CHAPTER BASED ON SYNTHETIC ORGANIC COLOURING MATTER; SYNTHETIC ORGANIC PRODUCTS OF A KIND USED AS FLUORESCENT BRIGHTENING AGENTS OR AS LUMINOPHORES,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3204.1	-Synthetic organic colouring matter and preparations based thereon as specified in Note 3 to this Chapter: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3204.11.00	--Disperse dyes and preparations based thereon	5%	0
3204.12.00	--Acid dyes, whether or not premetallised, and preparations based thereon; mordant dyes and preparations based thereon	5%	0
3204.13.00	--Basic dyes and preparations based thereon	5%	0
3204.14.00	--Direct dyes and preparations based thereon	0%	0
3204.15.00	--Vat dyes (including those usable in that state as pigments) and preparations based thereon	0%	0
3204.16.00	--Reactive dyes and preparations based thereon	5%	0
3204.17.00	--Pigments and preparations based thereon	5%	0
3204.19.00	--Other, including mixtures of colouring matter of two or more of 3204.11.00 to 3204.19.00	5%	0
3204.20.00	-Synthetic organic products of a kind used as fluorescent brightening agents	5%	0
3204.90.00	-Other	5%	0
3205.00.00	COLOUR LAKES; PREPARATIONS AS SPECIFIED IN NOTE 3 TO THIS CHAPTER BASED ON COLOUR LAKES	5%	0
3206	OTHER COLOURING MATTER; PREPARATIONS AS SPECIFIED IN NOTE 3 TO THIS CHAPTER, OTHER THAN THOSE OF 3203.00.00, 3204 OR 3205.00.00; INORGANIC PRODUCTS OF A KIND USED AS LUMINOPHORES,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3206.1	-Pigments and preparations based on titanium dioxide:		
3206.11.00	--Containing 80% or more by weight of titanium dioxide calculated on the dry matter	5%	0
3206.19.00	--Other	5%	0
3206.20.00	-Pigments and preparations based on chromium compounds	5%	0
3206.4	-Other colouring matter and other preparations:		
3206.41.00	--Ultramarine and preparations based thereon	0%	0
3206.42.00	--Lithopone and other pigments and preparations based on zinc sulphide	0%	0
3206.49	--Other:		
3206.49.10	---Goods, as follows: (a) pigments and preparations based on cadmium compounds; (b) pigments and preparations based on hexacyanoferrates (ferrocyanides and ferricyanides)	0%	0
3206.49.90	---Other	5%	0
3206.50.00	-Inorganic products of a kind used as luminophores	0%	0
3207	PREPARED PIGMENTS, PREPARED OPACIFIERS AND PREPARED COLOURS, VITRIFIABLE ENAMELS AND GLAZES, ENGOBES (SLIPS), LIQUID LUSTRES AND SIMILAR PREPARATIONS, OF A KIND USED IN THE CERAMIC, ENAMELLING OR GLASS INDUSTRY; GLASS FRIT AND OTHER GLASS, IN THE FORM OF POWDER, GRANULES OR FLAKES:		
3207.10.00	-Prepared pigments, prepared opacifiers, prepared colours and similar preparations	5%	0
3207.20.00	-Vitrifiable enamels and glazes, engobes (slips) and similar preparations	5%	0
3207.30.00	-Liquid lustres and similar preparations	0%	0
3207.40.00	-Glass frit and other glass, in the form of powder, granules or flakes	0%	0
3208	PAINTS AND VARNISHES (INCLUDING ENAMELS AND LACQUERS) BASED ON SYNTHETIC POLYMERS OR CHEMICALLY MODIFIED NATURAL POLYMERS, DISPERSED OR DISSOLVED IN A NON-AQUEOUS MEDIUM; SOLUTIONS AS DEFINED IN NOTE 4 TO THIS CHAPTER:		
3208.10.00	-Based on polyesters	5%	0
3208.20.00	-Based on acrylic or vinyl polymers	5%	0
3208.90.00	-Other	5%	0
3209	PAINTS AND VARNISHES (INCLUDING ENAMELS AND LACQUERS) BASED ON SYNTHETIC POLYMERS OR CHEMICALLY MODIFIED NATURAL POLYMERS, DISPERSED OR DISSOLVED IN AN AQUEOUS MEDIUM:		
3209.10.00	-Based on acrylic or vinyl polymers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3209.90.00	-Other	5%	0
3210.00.00	OTHER PAINTS AND VARNISHES (INCLUDING ENAMELS, LACQUERS AND DISTEMPERS); PREPARED WATER PIGMENTS OF A KIND USED FOR FINISHING LEATHER	5%	0
3211.00.00	PREPARED DRIERS	5%	0
3212	PIGMENTS (INCLUDING METALLIC POWDERS AND FLAKES) DISPERSED IN NON-AQUEOUS MEDIA, IN LIQUID OR PASTE FORM, OF A KIND USED IN THE MANUFACTURE OF PAINTS (INCLUDING ENAMELS); STAMPING FOILS; DYES AND OTHER COLOURING MATTER PUT UP IN FORMS OR PACKINGS FOR RETAIL SALE:		
3212.10.00	-Stamping foils	5%	0
3212.90.00	-Other	5%	0
3213	ARTISTS', STUDENTS' OR SIGNBOARD PAINTERS' COLOURS, MODIFYING TINTS, AMUSEMENT COLOURS AND THE LIKE, IN TABLETS, TUBES, JARS, BOTTLES, PANS OR IN SIMILAR FORMS OR PACKINGS:		
3213.10.00	-Colours in sets	5%	0
3213.90.00	-Other	5%	0
3214	GLAZIERS' PUTTY, GRAFTING PUTTY, RESIN CEMENTS, CAULKING COMPOUNDS AND OTHER MASTICS; PAINTERS' FILLINGS; NON-REFRACTORY SURFACING PREPARATIONS FOR FAÇADES, INDOOR WALLS, FLOORS, CEILINGS OR THE LIKE:		
3214.10.00	-Glaziers' putty, grafting putty, resin cements, caulking compounds and other mastics; painters' fillings	5%	0
3214.90.00	-Other	5%	0
3215	PRINTING INK, WRITING OR DRAWING INK AND OTHER INKS, WHETHER OR NOT CONCENTRATED OR SOLID:		
3215.1	-Printing ink:		
3215.11.00	--Black	5%	0
3215.19.00	--Other	5%	0
3215.90.00	-Other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33	ESSENTIAL OILS AND RESINOIDS; PERFUMERY, COSMETIC OR TOILET PREPARATIONS		
3301	ESSENTIAL OILS (TERPENELESS OR NOT), INCLUDING CONCRETES AND ABSOLUTES; RESINOIDS; EXTRACTED OLEORESINS; CONCENTRATES OF ESSENTIAL OILS IN FATS, IN FIXED OILS, IN WAXES OR THE LIKE, OBTAINED BY ENFLEURAGE OR MACERATION; TERPENIC BY-PRODUCTS OF THE DETERPENATION OF ESSENTIAL OILS; AQUEOUS DISTILLATES AND AQUEOUS SOLUTIONS OF ESSENTIAL OILS:		
3301.1	-Essential oils of citrus fruit:		
3301.12.00	--Of orange	0%	0
3301.13.00	--Of lemon	0%	0
3301.19.00	--Other	0%	0
3301.2	-Essential oils other than those of citrus fruit:		
3301.24.00	--Of peppermint (Mentha piperita)	0%	0
3301.25.00	--Of other mints	0%	0
3301.29.00	--Other	0%	0
3301.30.00	-Resinoids	0%	0
3301.90.00	-Other	0%	0
3302	MIXTURES OF ODORIFEROUS SUBSTANCES AND MIXTURES (INCLUDING ALCOHOLIC SOLUTIONS) WITH A BASIS OF ONE OR MORE OF THESE SUBSTANCES, OF A KIND USED AS RAW MATERIALS IN INDUSTRY; OTHER PREPARATIONS BASED ON ODORIFEROUS SUBSTANCES, OF A KIND USED FOR THE MANUFACTURE OF BEVERAGES:		
3302.10	-Of a kind used in the food or drink industries:		
3302.10.1	---Of a kind used in the manufacture of beverages:		
3302.10.11	----Preparations known as "Angostura aromatic bitters"	0%	0
3302.10.12	----Compound alcoholic preparations, NSA	5%	0
3302.10.19	----Other	4%	0
3302.10.90	---Other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3302.90.00	-Other	5%	0
3303.00.00	PERFUMES AND TOILET WATERS	5%	0
3304	BEAUTY OR MAKE-UP PREPARATIONS AND PREPARATIONS FOR THE CARE OF THE SKIN (OTHER THAN MEDICAMENTS), INCLUDING SUNSCREEN OR SUN TAN PREPARATIONS; MANICURE OR PEDICURE PREPARATIONS:		
3304.10.00	-Lip make-up preparations	5%	0
3304.20.00	-Eye make-up preparations	5%	0
3304.30.00	-Manicure or pedicure preparations	5%	0
3304.9	-Other:		
3304.91.00	--Powders, whether or not compressed	5%	0
3304.99.00	--Other	5%	0
3305	PREPARATIONS FOR USE ON THE HAIR:		
3305.10.00	-Shampoos	5%	0
3305.20.00	-Preparations for permanent waving or straightening	5%	0
3305.30.00	-Hair lacquers	5%	0
3305.90.00	-Other	5%	0
3306	PREPARATIONS FOR ORAL OR DENTAL HYGIENE, INCLUDING DENTURE FIXATIVE PASTES AND POWDERS; YARN USED TO CLEAN BETWEEN THE TEETH (DENTAL FLOSS), IN INDIVIDUAL RETAIL PACKAGES:		
3306.10.00	-Dentifrices	5%	0
3306.20	-Yarn used to clean between the teeth (dental floss):		
3306.20.10	---Of high tenacity yarn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0%	0
3306.20.90	---Other	5%	0
3306.90.00	-Other	5%	0
3307	PRE-SHAVE, SHAVING OR AFTER-SHAVE PREPARATIONS, PERSONAL DEODORANTS, BATH PREPARATIONS, DEPILATORIES AND OTHER PERFUMERY, COSMETIC OR TOILET PREPARATION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PREPARED ROOM DEODORISERS, WHETHER OR NOT PERFUMED OR HAVING DISINFECTANT PROPERTIES:		
3307.10.00	-Pre-shave, shaving or after-shave preparations	5%	0
3307.20.00	-Personal deodorants and antiperspirants	5%	0
3307.30.00	-Perfumed bath salts and other bath preparations	5%	0
3307.4	-Preparations for perfuming or deodorizing rooms, including odoriferous preparations used during religious rites:		
3307.41.00	--"Agarbatti" and other odoriferous preparations which operate by burning	0%	0
3307.49.00	--Other	5%	0
3307.90.00	-Other	5%	0
34	SOAP, ORGANIC SURFACE-ACTIVE AGENTS, WASHING PREPARATIONS, LUBRICATING PREPARATIONS, ARTIFICIAL WAXES, PREPARED WAXES, POLISHING OR SCOURING PREPARATIONS, CANDLES AND SIMILAR ARTICLES, MODELLING PASTES, "DENTAL WAXES" AND DENTAL PREPARATIONS WITH A BASIS OF PLASTER		
3401	SOAP; ORGANIC SURFACE-ACTIVE PRODUCTS AND PREPARATIONS FOR USE AS SOAP, IN THE FORM OF BARS, CAKES, MOULDED PIECES OR SHAPES, WHETHER OR NOT CONTAINING SOAP; ORGANIC SURFACE-ACTIVE PRODUCTS AND 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IN THE FORM OF LIQUID OR CREAM AND PUT UP FOR RETAIL SALE, WHETHER OR NOT CONTAINING SOAP; PAPER, WADDING, FELT AND NON-WOVENS, IMPREGNATED, COATED OR COVERED WITH SOAP OR DETERGENT:		
3401.1	-Soap and organic surface-active products and preparations, in the form of bars, cakes, moulded pieces or shapes, and paper, wadding, felt and non-wovens, impregnated, coated or covered with soap or detergent:		
3401.11.00	--For toilet use (including medicated products)	5%	0
3401.19.00	--Other	5%	0
3401.20.00	-Soap in other forms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3401.30.00	-Organic surface-active products and 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in the form of liquid or cream and put up for retail sale, whether or not containing soap	5%	0
3402	ORGANIC SURFACE-ACTIVE AGENTS (OTHER THAN SOAP); SURFACE-ACTIVE PREPARATIONS, WASHING PREPARATIONS (INCLUDING AUXILIARY WASHING PREPARATIONS) AND CLEANING PREPARATIONS, WHETHER OR NOT CONTAINING SOAP, OTHER THAN THOSE OF 3401:		
3402.1	-Organic surface-active agents, whether or not put up for retail sale:		
3402.11.00	--Anionic	5%	0
3402.12.00	--Cationic	5%	0
3402.13.00	--Non-ionic	5%	0
3402.19.00	--Other	5%	0
3402.20.00	-Preparations put up for retail sale	5%	0
3402.90.00	-Other	5%	0
3403	LUBRICATING PREPARATIONS (INCLUDING CUTTING-OIL PREPARATIONS, BOLT OR NUT RELEASE PREPARATIONS, ANTI-RUST OR ANTI-CORROSION PREPARATIONS AND MOULD RELEASE PREPARATIONS, BASED ON LUBRICANTS) AND PREPARATIONS OF A KIND USED FOR THE OIL OR GREASE TREATMENT OF TEXTILE MATERIALS, LEATHER, FURSKINS OR OTHER MATERIALS, BUT EXCLUDING PREPARATIONS CONTAINING, AS BASIC CONSTITUENTS, 70% OR MORE BY WEIGHT OF PETROLEUM OILS OR OF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3403.1	-Containing petroleum oils or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3403.11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textile materials, leather, furskins or other materials:		
3403.11.10	---In solid or semi-solid form	0%	0
3403.11.90	---Other	0%	0
3403.19	--Other:		
3403.19.10	---In solid or semi-solid form	0%	0
3403.19.90	---Other	0%	0
3403.9	-Other:		
3403.91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textile materials, leather, furskins or other materials:		
3403.91.10	---In solid or semi-solid form	0%	0
3403.91.90	---Other	0%	0
3403.99	--Other:		
3403.99.10	---In solid or semi-solid form	0%	0
3403.99.90	---Other	0%	0
3404	ARTIFICIAL WAXES AND PREPARED WAXES:		
3404.20.00	-Of poly(oxyethylene) (polyethylene glycol)	0%	0
3404.90.00	-Other	5%	0
3405	POLISHES AND CREAMS, FOR FOOTWEAR, FURNITURE, FLOORS, COACHWORK, GLASS OR METAL, SCOURING PASTES AND POWDERS AND SIMILAR PREPARATIONS (WHETHER OR NOT IN THE FORM OF PAPER, WADDING, FELT, NONWOVENS, CELLULAR PLASTICS OR CELLULAR RUBBER, IMPREGNATED, COATED OR COVERED WITH SUCH PREPARATIONS, EXCLUDING WAXES OF 3404):		
3405.10.00	-Polishes, creams and similar preparations for footwear or leather	5%	0
3405.20.00	-Polishes, creams and similar prepar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wooden furniture, floors or other woodwork	5%	0
3405.30.00	-Polishes and similar preparations for coachwork, other than metal polishes	5%	0
3405.40.00	-Scouring pastes and powders and other scouring preparations	5%	0
3405.90.00	-Other	5%	0
3406.00.00	CANDLES, TAPERS AND THE LIKE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3407.00.00	MODELLING PASTES, INCLUDING THOSE PUT UP FOR CHILDREN'S AMUSEMENT; PREPARATIONS KNOWN AS "DENTAL WAX" OR AS "DENTAL IMPRESSION COMPOUNDS", PUT UP IN SETS, IN PACKINGS FOR RETAIL SALE OR IN PLATES, HORSESHOE SHAPES, STICKS OR SIMILAR FORMS; OTHER PREPARATIONS FOR USE IN DENTISTRY, WITH A BASIS OF PLASTER (OF CALCINED GYPSUM OR CALCIUM SULPHATE)	5%	0
35	ALBUMINOIDAL SUBSTANCES; MODIFIED STARCHES; GLUES; ENZYMES		
3501	CASEIN, CASEINATES AND OTHER CASEIN DERIVATIVES; CASEIN GLUES:		
3501.10.00	-Casein	0%	0
3501.90.00	-Other	0%	0
3502	ALBUMINS (INCLUDING CONCENTRATES OF TWO OR MORE WHEY PROTEINS, CONTAINING BY WEIGHT MORE THAN 80% WHEY PROTEINS, CALCULATED ON THE DRY MATTER), ALBUMINATES AND OTHER ALBUMIN DERIVATIVES:		
3502.1	-Egg albumin:		
3502.11.00	--Dried	0%	0
3502.19.00	--Other	0%	0
3502.20.00	-Milk albumin, including concentrates of two or more whey proteins	0%	0
3502.90.00	-Other	0%	0
3503	GELATIN (INCLUDING GELATIN IN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WHETHER OR NOT SURFACE-WORKED OR COLOURED) AND GELATIN DERIVATIVES; ISINGLASS; OTHER GLUES OF ANIMAL ORIGIN, EXCLUDING CASEIN GLUES OF 3501:		
3503.00.10	---Gelatin	5%	0
3503.00.90	---Other	0%	0
3504.00.00	PEPTONES AND THEIR DERIVATIVES; OTHER PROTEIN SUBSTANCES AND THEIR DERIVATIV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HIDE POWDER, WHETHER OR NOT CHROMED	0%	0
3505	DEXTRINS AND OTHER MODIFIED STARCHES (FOR EXAMPLE, PREGELATINISED OR ESTERIFIED STARCHES); GLUES BASED ON STARCHES, OR ON DEXTRINS OR OTHER MODIFIED STARCHES:		
3505.10.00	-Dextrins and other modified starches	0%	0
3505.20.00	-Glues	0%	0
3506	PREPARED GLUES AND OTHER PREPARED ADHESIV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PRODUCTS SUITABLE FOR USE AS GLUES OR ADHESIVES, PUT UP FOR RETAIL SALE AS GLUES OR ADHESIVES, NOT EXCEEDING A NET WEIGHT OF 1 KG:		
3506.10.00	-Products suitable for use as glues or adhesives, put up for retail sale as glues or adhesives, not exceeding a net weight of 1 kg	5%	0
3506.9	-Other:		
3506.91.00	--Adhesives based on polymers of 3901 to 3913 or on rubber	5%	0
3506.99.00	--Other	5%	0
3507	ENZYMES; PREPARED ENZYM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3507.10.00	-Rennet and concentrates thereof	0%	0
3507.90.00	-Other	0%	0
36	EXPLOSIVES; PYROTECHNIC PRODUCTS; MATCHES; PYROPHORIC ALLOYS; CERTAIN COMBUSTIBLE PREPARATIONS		
3601.00.00	PROPELLENT POWDERS	5%	0
3602.00.00	PREPARED EXPLOSIVES, OTHER THAN PROPELLENT POWDERS	5%	0
3603.00.00	SAFETY FUSES; DETONATING FUSES; PERCUSSION OR DETONATING CAPS; IGNITERS; ELECTRIC DETONATORS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3604	FIREWORKS, SIGNALLING FLARES, RAIN ROCKETS, FOG SIGNALS AND OTHER PYROTECHNIC ARTICLES:		
3604.10.00	-Fireworks	5%	0
3604.90.00	-Other	5%	0
3605.00.00	MATCHES, OTHER THAN PYROTECHNIC ARTICLES OF 3604	0%	0
3606	FERRO-CERIUM AND OTHER PYROPHORIC ALLOYS IN ALL FORMS; ARTICLES OF COMBUSTIBLE MATERIALS AS SPECIFIED IN NOTE 2 TO THIS CHAPTER:		
3606.10.00	-Liquid or liquefied-gas fuels in containers of a kind used for filling or refilling cigarette or similar lighters and of a capacity not exceeding 300 cm3	0%	0
3606.90.00	-Other	0%	0
37	PHOTOGRAPHIC OR CINEMATOGRAPHIC GOODS		
3701	PHOTOGRAPHIC PLATES AND FILM IN THE FLAT, SENSITISED, UNEXPOSED, OF ANY MATERIAL OTHER THAN PAPER, PAPERBOARD OR TEXTILES; INSTANT PRINT FILM IN THE FLAT, SENSITISED, UNEXPOSED, WHETHER OR NOT IN PACKS:		
3701.10.00	-For X-ray	5%	0
3701.20.00	-Instant print film	5%	0
3701.30.00	-Other plates and film, with any side exceeding 255 mm	5%	0
3701.9	-Other:		
3701.91.00	--For colour photography (polychrome)	5%	0
3701.99.00	--Other	5%	0
3702	PHOTOGRAPHIC FILM IN ROLLS, SENSITISED, UNEXPOSED, OF ANY MATERIAL OTHER THAN PAPER, PAPERBOARD OR TEXTILES; INSTANT PRINT FILM IN ROLLS, SENSITISED, UNEXPOSED:		
3702.10.00	-For X-ray	5%	0
3702.3	-Other film, without perforations, of a width not exceeding 105 mm:		
3702.31	--For colour photography (polychrome):		
3702.31.10	---Instant print film	0%	0
3702.31.90	---Other	5%	0
3702.32	--Other, with silver halide emulsion:		
3702.32.10	---Instant print film	0%	0
3702.32.90	---Other	5%	0
3702.39	--Other:		
3702.39.10	---Instant print film	0%	0
3702.39.90	---Other	5%	0
3702.4	-Other film, without perforations, of a width exceeding 105 mm:		
3702.41	--Of a width exceeding 610 mm and of a length exceeding 200 m, for colour photography (polychrome):		
3702.41.10	---Instant print film	0%	0
3702.41.90	---Other	5%	0
3702.42	--Of a width exceeding 610 mm and of a length exceeding 200 m, other than for colour photography:		
3702.42.10	---Instant print film	0%	0
3702.42.90	---Other	5%	0
3702.43	--Of a width exceeding 610 mm and of a length not exceeding 200 m:		
3702.43.10	---Instant print film	0%	0
3702.43.90	---Other	5%	0
3702.44	--Of a width exceeding 105 mm but not exceeding 610 mm:		
3702.44.10	---Instant print film	0%	0
3702.44.90	---Other	5%	0
3702.5	-Other film, for colour photography (polychrome):		
3702.52	--Of a width not exceeding 16 mm:		
3702.52.10	---Of a length not exceeding 14 m	0%	0
3702.52.90	---Other	5%	0
3702.53.00	--Of a width exceeding 16 mm but not exceeding 35 mm and of a length not exceeding 30 m, for slides	5%	0
3702.54.00	--Of a width exceeding 16 mm but not exceeding 35 mm and of a length not exceeding 30 m, other than for slides	5%	0
3702.55.00	--Of a width exceeding 16 mm but not exceeding 35 mm and of a length exceeding 30 m	5%	0
3702.56.00	--Of a width exceeding 35 mm	0%	0
3702.9	-Other:		
3702.96	--Of a width not exceeding 35 mm and of a length not exceeding 30 m:		
3702.96.10	---Of a width not exceeding 16 mm	0%	0
3702.96.90	---Other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3702.97.00	--Of a width not exceeding 35 mm and of a length exceeding 30 m	0%	0
3702.98.00	--Of a width exceeding 35 mm	0%	0
3703	PHOTOGRAPHIC PAPER, PAPERBOARD AND TEXTILES, SENSITISED, UNEXPOSED:		
3703.10	-In rolls of a width exceeding 610 mm:		
3703.10.10	---Papers of a kind used in the production of heliographic prints, blue-prints and like prints	0%	0
3703.10.90	---Other	5%	0
3703.20.00	-Other, for colour photography (polychrome)	5%	0
3703.90.00	-Other	5%	0
3704.00.00	PHOTOGRAPHIC PLATES, FILM, PAPER, PAPERBOARD AND TEXTILES, EXPOSED BUT NOT DEVELOPED	0%	0
3705	PHOTOGRAPHIC PLATES AND FILM, EXPOSED AND DEVELOPED, OTHER THAN CINEMATOGRAPHIC FILM:		
3705.10.00	-For offset reproduction	5%	0
3705.90	-Other:		
3705.90.20	---Goods, as follows: (a) films, filmstrips, slides and transparencies; (b) microfilms	0%	0
3705.90.90	---Other	5%	0
3706	CINEMATOGRAPHIC FILM, EXPOSED AND DEVELOPED,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SOUND TRACK OR CONSISTING ONLY OF SOUND TRACK:		
3706.10.00	-Of a width of 35 mm or more	0%	0
3706.90.00	-Other	0%	0
3707	CHEMICAL PREPARATIONS FOR PHOTOGRAPHIC USES (OTHER THAN VARNISHES, GLUES, ADHESIVES AND SIMILAR PREPARATIONS); UNMIXED PRODUCTS FOR PHOTOGRAPHIC USES, PUT UP IN MEASURED PORTIONS OR PUT UP FOR RETAIL SALE IN A FORM READY FOR USE:		
3707.10.00	-Sensitising emulsions	5%	0
3707.90.00	-Other	5%	0
38	MISCELLANEOUS CHEMICAL PRODUCTS		
3801	ARTIFICIAL GRAPHITE; COLLOIDAL OR SEMI-COLLOIDAL GRAPHITE; PREPARATIONS BASED ON GRAPHITE OR OTHER CARBON IN THE FORM OF PASTES, BLOCKS, PLATES OR OTHER SEMI-MANUFACTURES:		
3801.10.00	-Artificial graphite	0%	0
3801.20.00	-Colloidal or semi-colloidal graphite	0%	0
3801.30.00	-Carbonaceous pastes for electrodes and similar pastes for furnace linings	0%	0
3801.90.00	-Other	0%	0
3802	ACTIVATED CARBON; ACTIVATED NATURAL MINERAL PRODUCTS; ANIMAL BLACK, INCLUDING SPENT ANIMAL BLACK:		
3802.10.00	-Activated carbon	0%	0
3802.90.00	-Other	0%	0
3803.00.00	TALL OIL, WHETHER OR NOT REFINED	0%	0
3804.00.00	RESIDUAL LYES FROM THE MANUFACTURE OF WOOD PULP, WHETHER OR NOT CONCENTRATED, DESUGARED OR CHEMICALLY TREATED, INCLUDING LIGNIN SULPHONATES, BUT EXCLUDING TALL OIL OF 3803.00.00	0%	0
3805	GUM, WOOD OR SULPHATE TURPENTINE AND OTHER TERPENIC OILS PRODUCED BY THE DISTILLATION OR OTHER TREATMENT OF CONIFEROUS WOODS; CRUDE DIPENTENE; SULPHITE TURPENTINE AND OTHER CRUDE PARA-CYMENE; PINE OIL CONTAINING ALPHA-TERPINEOL AS THE MAIN CONSTITUENT:		
3805.10.00	-Gum, wood or sulphate turpentine oils	0%	0
3805.90.00	-Other	0%	0
3806	ROSIN AND RESIN ACIDS, AND DERIVATIVES THEREOF; ROSIN SPIRIT AND ROSIN OILS; RUN GUMS:		
3806.10.00	-Rosin and resin acids	0%	0
3806.20.00	-Salts of rosin, of resin acids or of derivatives of rosin or resin acids, other than salts of rosin adducts	0%	0
3806.30.00	-Ester gums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3806.90.00	-Other	0%	0
3807.00.00	WOOD TAR; WOOD TAR OILS; WOOD CREOSOTE; WOOD NAPHTHA; VEGETABLE PITCH; BREWERS' PITCH AND SIMILAR PREPARATIONS BASED ON ROSIN, RESIN ACIDS OR ON VEGETABLE PITCH	0%	0
3808	INSECTICIDES, RODENTICIDES, FUNGICIDES, HERBICIDES, ANTI-SPROUTING PRODUCTS AND PLANT-GROWTH REGULATORS, DISINFECTANTS AND SIMILAR PRODUCTS, PUT UP IN FORMS OR PACKINGS FOR RETAIL SALE OR AS PREPARATIONS OR ARTICLES (FOR EXAMPLE, SULPHUR-TREATED BANDS, WICKS AND CANDLES, AND FLY-PAPERS):		
3808.50	-Goods specified in Subheading Note 1 to this Chapter:		
3808.50.10	---Goods, as follows: (a) fly-papers; (b) mosquito spirals and coils	0%	0
3808.50.90	---Other	5%	0
3808.9	-Other:		
3808.91	--Insecticides:		
3808.91.10	---Goods, other than goods of 3808.50.10, as follows: (a) camphor; (b) fly-papers; (c) mosquito spirals and coils	0%	0
3808.91.90	---Other	5%	0
3808.92.00	--Fungicides	5%	0
3808.93.00	--Herbicides, anti-sprouting products and plant-growth regulators	5%	0
3808.94.00	--Disinfectants	5%	0
3808.99.00	--Other	5%	0
3809	FINISHING AGENTS, DYE CARRIERS TO ACCELERATE THE DYEING OR FIXING OF DYESTUFFS AND OTHER PRODUCTS AND PREPARATIONS (FOR EXAMPLE, DRESSINGS AND MORDANTS), OF A KIND USED IN THE TEXTILE, PAPER, LEATHER OR LIKE INDUSTRI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3809.10.00	-With a basis of amylaceous substances	0%	0
3809.9	-Other:		
3809.91.00	--Of a kind used in the textile or like industries	0%	0
3809.92.00	--Of a kind used in the paper or like industries	0%	0
3809.93.00	--Of a kind used in the leather or like industries	0%	0
3810	PICKLING PREPARATIONS FOR METAL SURFACES; FLUXES AND OTHER AUXILIARY PREPARATIONS FOR SOLDERING, BRAZING OR WELDING; SOLDERING, BRAZING OR WELDING POWDERS AND PASTES CONSISTING OF METAL AND OTHER MATERIALS; PREPARATIONS OF A KIND USED AS CORES OR COATINGS FOR WELDING ELECTRODES OR RODS:		
3810.10.00	-Pickling preparations for metal surfaces; soldering, brazing or welding powders and pastes consisting of metal and other materials	0%	0
3810.90.00	-Other	0%	0
3811	ANTI-KNOCK PREPARATIONS, OXIDATION INHIBITORS, GUM INHIBITORS, VISCOSITY IMPROVERS, ANTI-CORROSIVE PREPARATIONS AND OTHER PREPARED ADDITIVES, FOR MINERAL OILS (INCLUDING GASOLINE) OR FOR OTHER LIQUIDS USED FOR THE SAME PURPOSES AS MINERAL OILS:		
3811.1	-Anti-knock preparations:		
3811.11.00	--Based on lead compounds	0%	0
3811.19.00	--Other	0%	0
3811.2	-Additives for lubricating oils:		
3811.21	--Containing petroleum oils or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3811.21.10	---In solid or semi-solid form	0%	0
3811.21.90	---Other	0%	0
3811.29.00	--Other	0%	0
3811.90.00	-Other	0%	0
3812	PREPARED RUBBER ACCELERATORS; COMPOUND PLASTICISERS FOR RUBBER OR PLASTIC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ANTI-OXIDISING PREPARATIONS AND OTHER COMPOUND STABILISERS FOR RUBBER OR PLASTICS:		
3812.10.00	-Prepared rubber accelerators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3812.20.00	-Compound plasticisers for rubber or plastics	0%	0
3812.30.00	-Anti-oxidising preparations and other compound stabilisers for rubber or plastics	5%	0
3813.00.00	PREPARATIONS AND CHARGES FOR FIRE-EXTINGUISHERS; CHARGED FIRE-EXTINGUISHING GRENADES	5%	0
3814.00.00	ORGANIC COMPOSITE SOLVENTS AND THINNER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PREPARED PAINT OR VARNISH REMOVERS:	5%	0
3815	REACTION INITIATORS, REACTION ACCELERATORS AND CATALYTIC PREPARATION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3815.1	-Supported catalysts:		
3815.11.00	--With nickel or nickel compounds as the active substance	5%	0
3815.12.00	--With precious metal or precious metal compounds as the active substance	5%	0
3815.19.00	--Other	5%	0
3815.90.00	-Other	5%	0
3816.00.00	REFRACTORY CEMENTS, MORTARS, CONCRETES AND SIMILAR COMPOSITIONS, OTHER THAN PRODUCTS OF 3801	5%	0
3817	-MIXED ALKYLBENZENES AND MIXED ALKYLNAPHTHALENES, OTHER THAN THOSE OF 2707 OR 2902:		
3817.00.10	---Mixed alkylbenzenes	5%	0
3817.00.20	---Mixed alkylnaphthalenes	0%	0
3818.00.00	CHEMICAL ELEMENTS DOPED FOR USE IN ELECTRONICS, IN THE FORM OF DISCS, WAFERS OR SIMILAR FORMS; CHEMICAL COMPOUNDS DOPED FOR USE IN ELECTRONICS	0%	0
3819.00.00	HYDRAULIC BRAKE FLUIDS AND OTHER PREPARED LIQUIDS FOR HYDRAULIC TRANSMISSION , NOT CONTAINING OR CONTAINING LESS THAN 70% BY WEIGHT OF PETROLEUM OILS OR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5%	0
3820.00.00	ANTI-FREEZING PREPARATIONS AND PREPARED DE-ICING FLUIDS	5%	0
3821	PREPARED CULTURE MEDIA FOR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MICRO-ORGANISMS (INCLUDING VIRUSES AND THE LIKE) OR OF PLANT, HUMAN OR ANIMAL CELLS:		
3821.00.10	---Prepared culture media for the development or maintenance of plant, human or animal cells	5%	0
3821.00.90	---Other	0%	0
3822	DIAGNOSTIC OR LABORATORY REAGENTS ON A BACKING, PREPARED DIAGNOSTIC OR LABORATORY REAGENTS WHETHER OR NOT ON A BACKING, OTHER THAN THOSE OF 3002 OR 3006;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3822.00.1	---On a backing of plastics, in the forms described in Note 10 to Chapter 39:		
3822.00.11	----Of cellulose	0%	0
3822.00.19	----Of other plastics	5%	0
3822.00.20	---On a backing of plastics, NSA	5%	0
3822.00.3	---Goods, as follows: (a) in strips or rolls of a width exceeding 15 cm; (b) in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with one side exceeding 36 cm and the other side exceeding 15 cm, in the unfolded state:		
3822.00.31	----Indicator paper and paperboard	0%	0
3822.00.39	----Other	5%	0
3822.00.40	---On a backing of paper or paperboard, NSA	5%	0
3822.00.50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as described in Note 2 to this chapter	0%	0
3822.00.90	---Other	0%	0
3823	INDUSTRIAL MONOCARBOXYLIC FATTY ACIDS; ACID OILS FROM REFINING; INDUSTRIAL FATTY ALCOHOLS:		
3823.1	-Industrial monocarboxylic fatty acids; acid oils from refining:		
3823.11.00	--Stearic acid	5%	0
3823.12.00	--Oleic acid	5%	0
3823.13.00	--Tall oil fatty acids	5%	0
3823.19.00	--Other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3823.70.00	-Industrial fatty alcohols	0%	0
3824	PREPARED BINDERS FOR FOUNDRY MOULDS OR CORES; CHEMICAL PRODUCTS AND PREPARATIONS OF THE CHEMICAL OR ALLIED INDUSTRIES (INCLUDING THOSE CONSISTING OF MIXTURES OF NATURAL PRODUCT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3824.10.00	-Prepared binders for foundry moulds or cores	0%	0
3824.30.00	-Non-agglomerated metal carbides mixed together or with metallic binders	0%	0
3824.40.00	-Prepared additives for cements, mortars or concretes	5%	0
3824.50.00	-Non-refractory mortars and concretes	0%	0
3824.60.00	-Sorbitol other than that of 2905.44.00	0%	0
3824.7	-Mixtures containing halogenated derivatives of methane, ethane or propane:		
3824.71.00	--Containing chlorofluorocarbons (CFCs), whether or not containing hydrochlorofluorocarbons (HCFCs), perfluorocarbons (PFCs) or hydrofluorocarbons (HCFs)	0%	0
3824.72.00	--Containing bromochlorodifluoromethane, bromotrifluoromethane or dibromotetrafluoroethanes	0%	0
3824.73	--Containing hydrobromofluorocarbons (HBFCs):		
3824.73.10	---Containing perhalogenated derivatives containing two or more different halogens	0%	0
3824.73.90	---Other	5%	0
3824.74	--Containing hydrochlorofluorocarbons (HCFCs), whether or not containing perfluorocarbons (PFCs) or hydrofluorocarbons (HFCs), but not containing chlorofluorocarbons (CFCs):		
3824.74.10	---Containing perhalogenated derivatives containing two or more different halogens	0%	0
3824.74.90	---Other	5%	0
3824.75	--Containing carbon tetrachloride:		
3824.75.10	---Containing perhalogenated derivatives containing two or more different halogens	0%	0
3824.75.90	---Other	5%	0
3824.76	--Containing 1,1,1-trichloroethane (methyl chloroform):		
3824.76.10	---Containing perhalogenated derivatives containing two or more different halogens	0%	0
3824.76.90	---Other	5%	0
3824.77	--Containing bromomethane (methyl bromide) or bromochloromethane:		
3824.77.10	---Containing perhalogenated derivatives containing two or more different halogens	0%	0
3824.77.90	---Other	5%	0
3824.78	--Containing perfluorocarbons (PFCs) or hydrofluorocarbons (HFCs), but not containing chlorofluorocarbons (CFCs) or hydrochlorofluorocarbons (HCFCs):		
3824.78.10	---Containing perhalogenated derivatives containing two or more different halogens	0%	0
3824.78.90	---Other	5%	0
3824.79	--Other:		
3824.79.10	---Containing perhalogenated derivatives containing two or more different halogens	0%	0
3824.79.90	---Other	5%	0
3824.8	-Mixtures and preparations containing oxirane (ethylene oxide), polybrominated biphenyls (PBBs),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polychlorinated terphenyls (PCTs) or tris(2,3-dibromopropyl) phosphate:		
3824.81.00	--Containing oxirane (ethylene oxide)	5%	0
3824.82.00	--Containing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polychlorinated terphenyls (PCTs) or polybrominated biphenyls (PBBs)	5%	0
3824.83.00	--Containing tris(2,3-dibromopropyl) phosphate	5%	0
3824.90	-Other:		
3824.90.10	---Goods, as follows: (a) case hardening preparations; (b) food preservatives; (c) organic derivatives of clay minerals; (d) Seger cones and other fusible ceramic firing testers; (e) naphthenic acids, their water-insoluble salts and their esters; (f) preparations, including patches (transdermal systems), intended to assist smokers to stop smoking, other than goods of 2106.90.20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3824.90.40	---Mixtures containing perhalogenated derivatives of acyclic hydrocarbons containing two or more different halogens, other than goods of 3824.7	0%	0
3824.90.50	---Blends of gasoline and ethanol, not being blends classified to 2710	0%	0
3824.90.60	---Blends of diesel and ethanol, not being blends classified to 2710	0%	0
3824.90.90	---Other	5%	0
3825	RESIDUAL PRODUCTS OF THE CHEMICAL OR ALLIED INDUSTRI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MUNICIPAL WASTE; SEWAGE SLUDGE; OTHER WASTES SPECIFIED IN NOTE 6 TO THIS CHAPTER:		
3825.10.00	-Municipal waste	5%	0
3825.20.00	-Sewage sludge	5%	0
3825.30	-Clinical waste:		
3825.30.1	---Wadding, gauze, bandages and similar articles of 3005:		
3825.30.11	----Of goods of 3005.10.00 or 3005.90.90	5%	0
3825.30.19	----Of goods of 3005.90.10	5%	0
3825.30.20	---Surgical gloves	5%	0
3825.30.30	---Syringes, needles, catheters, cannulae and the like of 9018.31.00, 9018.32.00 or 9018.39.00	0%	0
3825.30.90	---Other	5%	0
3825.4	-Waste organic solvents:		
3825.41.00	--Halogenated	5%	0
3825.49.00	--Other	5%	0
3825.50.00	-Wastes of metal picking liquors, hydraulic fluids, brake fluids and anti-freeze fluids	5%	0
3825.6	-Other wastes from chemical or allied industries:		
3825.61.00	--Mainly containing organic constituents	5%	0
3825.69.00	--Other	5%	0
3825.90.00	-Other	5%	0
3826	BIODIESEL AND MIXTURES THEREOF, NOT CONTAINING OR CONTAINING LESS THAN 70% BY WEIGHT OF PETROLEUM OILS OR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3826.00.10	---Biodiesel, other than goods of 2710 or 3826.00.20	0%	0
3826.00.20	---Mixtures of biodiesel and other substances, not being blends classified to 2710	0%	0
39	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3901	POLYMERS OF ETHYLENE, IN PRIMARY FORMS:		
3901.10.00	-Polyethylene having a specific gravity of less than 0.94	5%	5
3901.20.00	-Polyethylene having a specific gravity of 0.94 or more	5%	5
3901.30.00	-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s	5%	3
3901.90.00	-Other	5%	5
3902	POLYMERS OF PROPYLENE OR OF OTHER OLEFINS, IN PRIMARY FORMS:		
3902.10.00	-Polypropylene	5%	3
3902.20.00	-Polyisobutylene	0%	0
3902.30.00	-Propylene copolymers	5%	3
3902.90.00	-Other	5%	3
3903	POLYMERS OF STYRENE, IN PRIMARY FORMS:		
3903.1	-Polystyrene:		
3903.11.00	--Expansible	5%	5
3903.19.00	--Other	5%	5
3903.20.00	-Styrene-acrylonitrile (SAN) copolymers	5%	3
3903.30.00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ABS) copolymers	5%	3
3903.90.00	-Other	5%	3
3904	POLYMERS OF VINYL CHLORIDE OR OF OTHER HALOGENATED OLEFINS, IN PRIMARY FORMS:		
3904.10.00	-Poly(vinyl chloride), not mixed with any other substances	5%	5
3904.2	-Other poly(vinyl chloride):		
3904.21.00	--Non-plasticised	5%	5
3904.22.00	--Plasticised	5%	5
3904.30.00	-Vinyl chloride-vinyl acetate copolymers	5%	3
3904.40.00	-Other vinyl chloride copolymers	5%	5
3904.50.00	-Vinylidene chloride polymers	5%	5
3904.6	-Fluoro-polymers:		
3904.61.00	--Polytetrafluoroethylene	5%	5
3904.69.00	--Other	5%	5
3904.90.00	-Other	5%	5
3905	POLYMERS OF VINYL ACETATE OR OF OTHER VINYL ESTERS, IN PRIMARY FORMS; OTHER VINYL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POLYMERS IN PRIMARY FORMS:		
3905.1	-Poly(vinyl acetate):		
3905.12.00	--In aqueous dispersion	5%	0
3905.19.00	--Other	5%	0
3905.2	-Vinyl acetate copolymers:		
3905.21.00	--In aqueous dispersion	5%	0
3905.29.00	--Other	5%	0
3905.30.00	-Poly(vinyl alcohol), whether or not containing unhydrolysed acetate groups	5%	0
3905.9	-Other:		
3905.91.00	--Copolymers	5%	0
3905.99.00	--Other	5%	0
3906	ACRYLIC POLYMERS IN PRIMARY FORMS:		
3906.10.00	-Poly(methyl methacrylate)	5%	0
3906.90.00	-Other	5%	0
3907	POLYACETALS, OTHER POLYETHERS AND EPOXIDE RESINS, IN PRIMARY FORMS; POLYCARBONATES, ALKYD RESINS, POLYALLYL ESTERS AND OTHER POLYESTERS, IN PRIMARY FORMS:		
3907.10.00	-Polyacetals	5%	3
3907.20.00	-Other polyethers	5%	5
3907.30.00	-Epoxide resins	5%	3
3907.40.00	-Polycarbonates	5%	3
3907.50.00	-Alkyd resins	5%	5
3907.60.00	-Poly(ethylene terephthalate)	5%	5
3907.70.00	-Poly(lactic acid)	5%	5
3907.9	-Other polyesters:		
3907.91.00	--Unsaturated	5%	5
3907.99	--Other:		
3907.99.10	---Polybutylene terephthalate	5%	3
3907.99.90	---Other	5%	3
3908	POLYAMIDES IN PRIMARY FORMS:		
3908.10.00	-Polyamide-6, -11, -12, -6,6, -6,9, -6,10 or -6,12	5%	0
3908.90.00	-Other	5%	0
3909	AMINO-RESINS, PHENOLIC RESINS AND POLYURETHANES, IN PRIMARY FORMS:		
3909.10.00	-Urea resins; thiourea resins	5%	0
3909.20.00	-Melamine resins	5%	0
3909.30.00	-Other amino-resins	5%	0
3909.40.00	-Phenolic resins	5%	0
3909.50	-Polyurethanes:		
3909.50.10	---Goods, as follows: (a) addition products of polyols, being: (i) polyester polyols; or (ii) polyether polyols, being, or having the essential character of, ethylene oxide or propylene oxide derivatives, reacted with isocyanates, containing unreacted hydroxyl or isocyanate groups and, normally, further reacted through these hydroxyl or isocyanate groups; (b) goods, put in sets consisting of two or more separate constituents which, when mixed together, form a polyurethane	5%	3
3909.50.90	---Other	5%	3
3910.00.00	SILICONES IN PRIMARY FORMS	5%	0
3911	PETROLEUM RESINS, COUMARONE-INDENE RESINS, POLYTERPENES, POLYSULPHIDES, POLYSULPHONES AND OTHER PRODUCTS SPECIFIED IN NOTE 3 TO THIS CHAPTER,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IN PRIMARY FORMS:		
3911.10.00	-Petroleum resins, coumarone, indene or coumarone-indene resins and polyterpenes	5%	0
3911.90.00	-Other	5%	0
3912	CELLULOSE AND ITS CHEMICAL DERIVATIV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IN PRIMARY FORMS:		
3912.1	-Cellulose acetates:		
3912.11.00	--Non-plasticised	0%	0
3912.12.00	--Plasticised	0%	0
3912.20.00	-Cellulose nitrates (including collodions)	5%	0
3912.3	-Cellulose ethers:		
3912.31.00	--Carboxymethylcellulose and its salts	5%	0
3912.39.00	--Other	5%	0
3912.90.00	-Other	5%	0
3913	NATURAL POLYMERS (FOR EXAMPLE, ALGINIC ACID) AND MODIFIED NATURAL POLYMERS (FOR EXAMPLE, HARDENED PROTEINS, CHEMICAL DERIVATIVES OF NATURAL RUBBER), NOT ELSEWHERE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SPECIFIED OR INCLUDED, IN PRIMARY FORMS:		
3913.10.00	-Alginic acid, its salts and esters	5%	0
3913.90.00	-Other	5%	0
3914.00.00	ION-EXCHANGERS BASED ON POLYMERS OF 3901 TO 3913, IN PRIMARY FORMS	5%	0
3915	WASTE, PARINGS AND SCRAP, OF PLASTICS:		
3915.10.00	-Of polymers of ethylene	5%	0
3915.20.00	-Of polymers of styrene	5%	0
3915.30.00	-Of polymers of vinyl chloride	5%	0
3915.90	-Of other plastics:		
3915.90.10	---Of plastics, as follows: (a) of polymers of propylene; (b) of polymers of vinyl; (c) of polymers of vinylidene	5%	0
3915.90.90	---Of other plastics	5%	0
3916	MONOFILAMENT OF WHICH ANY CROSS-SECTIONAL DIMENSION EXCEEDS 1 mm, RODS, STICKS AND PROFILE SHAPES, WHETHER OR NOT SURFACE-WORKED BUT NOT OTHERWISE WORKED, OF PLASTICS:		
3916.10.00	-Of polymers of ethylene	5%	0
3916.20.00	-Of polymers of vinyl chloride	5%	0
3916.90.00	-Of other plastics	5%	0
3917	TUBES, PIPES AND HOSES, AND FITTINGS THEREFOR (FOR EXAMPLE, JOINTS, ELBOWS, FLANGES), OF PLASTICS:		
3917.10.00	-Artificial guts (sausage casings) of hardened protein or of cellulosic materials	0%	0
3917.2	-Tubes, pipes and hoses, rigid:		
3917.21	--Of polymers of ethylene:		
3917.21.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3917.21.90	---Other	5%	0
3917.22.00	--Of polymers of propylene	5%	5
3917.23.00	--Of polymers of vinyl chloride	5%	5
3917.29.00	--Of other plastics	5%	5
3917.3	-Other tubes, pipes and hoses:		
3917.31	--Flexible tubes, pipes and hoses, having a minimum burst pressure of		
	27.6 MPa:		
3917.31.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3917.31.90	---Other	5%	0
3917.32	--Other, not reinforced or otherwise combined with other materials, without fittings:		
3917.32.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3917.32.90	---Other	5%	0
3917.33	--Other, not reinforced or otherwise combined with other materials, with fittings:		
3917.33.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3917.33.90	---Other	5%	0
3917.39	--Other:		
3917.39.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3917.39.90	---Other	5%	0
3917.40.00	-Fittings	5%	0
3918	FLOOR COVERINGS OF PLASTICS, WHETHER OR NOT SELF-ADHESIVE, IN ROLLS OR IN THE FORM OF TILES; WALL OR CEILING COVERINGS OF PLASTICS, AS DEFINED IN NOTE 9 TO THIS CHAPTER:		
3918.10.00	-Of polymers of vinyl chloride	5%	0
3918.90.00	-Of other plastics	5%	0
3919	SELF-ADHESIVE PLATES, SHEETS, FILM, FOIL, TAPE, STRIP AND OTHER FLAT SHAPES, OF PLASTICS, WHETHER OR NOT IN ROLLS:		
3919.10.00	-In rolls of a width not exceeding 20 cm	5%	0
3919.90.00	-Other	5%	0
3920	OTHER PLATES, SHEETS, FILM, FOIL AND STRIP, OF PLASTICS, NON-CELLULAR AND NOT REINFORCED, LAMINATED, SUPPORTED OR SIMILARLY COMBINED WITH OTHER MATERIALS:		
3920.10.00	-Of polymers of ethylene	5%	5
3920.20.00	-Of polymers of propylene	5%	5
3920.30.00	-Of polymers of styrene	5%	5
3920.4	-Of polymers of vinyl chloride: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3920.43.00	--Containing by weight not less than 6% of plasticisers	5%	5
3920.49.00	--Other	5%	5
3920.5	-Of acrylic polymers:		
3920.51.00	--Of poly(methyl methacrylate)	5%	5
3920.59.00	--Other	5%	5
3920.6	-Of polycarbonates, alkyd resins, polyallyl esters or other polyesters:		
3920.61.00	--Of polycarbonates	5%	5
3920.62.00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5%	5
3920.63.00	--Of unsaturated polyesters	5%	3
3920.69.00	--Of other polyesters	5%	5
3920.7	-Of cellulose or its chemical derivatives:		
3920.71.00	--Of regenerated cellulose	0%	0
3920.73.00	--Of cellulose acetate	0%	0
3920.79.00	--Of other cellulose derivatives	0%	0
3920.9	-Of other plastics:		
3920.91.00	--Of poly(vinyl butyral)	5%	3
3920.92.00	--Of polyamides	5%	5
3920.93.00	--Of amino-resins	0%	0
3920.94.00	--Of phenolic resins	0%	0
3920.99.00	--Of other plastics	5%	5
3921	OTHER PLATES, SHEETS, FILM, FOIL AND STRIP, OF PLASTICS:		
3921.1	-Cellular:		
3921.11.00	--Of polymers of styrene	5%	0
3921.12.00	--Of polymers of vinyl chloride	5%	0
3921.13.00	--Of polyurethanes	5%	0
3921.14.00	--Of regenerated cellulose	5%	0
3921.19.00	--Of other plastics	5%	0
3921.90	-Other:		
3921.90.10	---Of cellulose or its chemical derivatives, coated, covered or laminated	0%	0
3921.90.90	---Other	5%	0
3922	BATHS, SHOWER-BATHS, SINKS, WASH-BASINS, BIDETS, LAVATORY PANS, SEATS AND COVERS, FLUSHING CISTERNS AND SIMILAR SANITARY WARE, OF PLASTICS:		
3922.10.00	-Baths, shower-baths, sinks and wash-basins	5%	0
3922.20.00	-Lavatory seats and covers	5%	0
3922.90.00	-Other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3923	ARTICLES FOR THE CONVEYANCE OR PACKING OF GOODS, OF PLASTICS; STOPPERS, LIDS, CAPS AND OTHER CLOSURES, OF PLASTICS:		
3923.10.00	-Boxes, cases, crates and similar articles	5%	0
3923.2	-Sacks and bags (including cones):		
3923.21.00	--Of polymers of ethylene	5%	0
3923.29.00	--Of other plastics	5%	0
3923.30.00	-Carboys, bottles, flasks and similar articles	5%	0
3923.40.00	-Spools, cops, bobbins and similar supports	5%	0
3923.50.00	-Stoppers, lids, caps and other closures	5%	0
3923.90.00	-Other	5%	0
3924	TABLEWARE, KITCHENWARE, OTHER HOUSEHOLD ARTICLES AND HYGIENIC OR TOILET ARTICLES, OF PLASTICS:		
3924.10.00	-Tableware and kitchenware	5%	0
3924.90.00	-Other	5%	0
3925	BUILDERS' WARE OF PLASTIC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3925.10.00	-Reservoirs, tanks, vats and similar containers, of a capacity exceeding 300 L	5%	0
3925.20.00	-Doors, windows and their frames and thresholds for doors	5%	0
3925.30.00	-Shutters, blinds (including Venetian blinds) and similar articles and parts thereof	5%	0
3925.90.00	-Other	5%	0
3926	OTHER ARTICLES OF PLASTICS AND ARTICLES OF OTHER MATERIALS OF 3901 TO 3914.00.00:		
3926.10.00	-Office or school supplies	5%	0
3926.20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including gloves, mittens and mitts):		
3926.20.10	---Corset busks	5%	0
3926.20.2	---Garments:		
3926.20.21	----Anti-radiation suits, anti-contamination suits, and similar protective garments	5%	0
3926.20.29	----Other	10%	5
3926.20.90	---Other	0%	0
3926.30	-Fittings for furniture, coachwork or the like: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3926.30.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3926.30.90	---Other	5%	0
3926.40.00	-Statuettes and other ornamental articles	5%	0
3926.90	-Other:		
3926.90.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3926.90.90	---Other	5%	0
40	RUBBER AND ARTICLES THEREOF		
4001	NATURAL RUBBER, BALATA, GUTTA-PERCHA, GUAYULE, CHICLE AND SIMILAR NATURAL GUMS, IN PRIMARY FORMS OR IN PLATES, SHEETS OR STRIP:		
4001.10.00	-Natural rubber latex, whether or not prevulcanised	0%	0
4001.2	-Natural rubber in other forms:		
4001.21.00	--Smoked sheets	0%	0
4001.22.00	--Technically specified natural rubber (TSNR)	0%	0
4001.29.00	--Other	0%	0
4001.30.00	-Balata, gutta-percha, guayule, chicle and similar natural gums	0%	0
4002	SYNTHETIC RUBBER AND FACTICE DERIVED FROM OILS, IN PRIMARY FORMS OR IN PLATES, SHEETS OR STRIP; MIXTURES OF ANY PRODUCT OF 4001 WITH ANY PRODUCT OF THIS HEADING, IN PRIMARY FORMS OR IN PLATES, SHEETS OR STRIP:		
4002.1	-Styrene-butadiene rubber (SBR); carboxylated styrene-butadiene rubber (XSBR):		
4002.11.00	--Latex	5%	0
4002.19.00	--Other	5%	0
4002.20.00	-Butadiene rubber (BR)	5%	0
4002.3	-Isobutene-isoprene (butyl) rubber (IIR); halo-isobutene-isoprene rubber (CIIR or BIIR):		
4002.31.00	--Isobutene-isoprene (butyl) rubber (IIR)	5%	0
4002.39.00	--Other	5%	0
4002.4	-Chloroprene (chlorobutadiene) rubber (CR):		
4002.41.00	--Latex	5%	0
4002.49.00	--Other	5%	0
4002.5	-Acrylonitrile-butadiene rubber (NBR):		
4002.51.00	--Latex	5%	0
4002.59.00	--Other	5%	0
4002.60.00	-Isoprene rubber (IR)	0%	0
4002.70.00	-Ethylene-propylene-non-conjugated diene rubber (EPDM)	5%	0
4002.80.00	-Mixtures of any product of 4001 with any product of this heading	5%	0
4002.9	-Other:		
4002.91.00	--Latex	5%	0
4002.99.00	--Other	5%	0
4003.00.00	RECLAIMED RUBBER IN PRIMARY FORMS OR IN PLATES, SHEETS OR STRIP	5%	0
4004.00.00	WASTE, PARINGS AND SCRAP OF RUBBER (OTHER THAN HARD RUBBER) AND POWDERS AND GRANULES OBTAINED THEREFROM	5%	0
4005	COMPOUNDED RUBBER, UNVULCANISED, IN PRIMARY FORMS OR IN PLATES, SHEETS OR STRIP:		
4005.10.00	-Compounded with carbon black or silica	5%	0
4005.20.00	-Solutions; dispersions other than those of 4005.10.00	5%	0
4005.9	-Other:		
4005.91.00	--Plates, sheets and strip	5%	0
4005.99.00	--Other	5%	0
4006	OTHER FORMS (FOR EXAMPLE, RODS, TUBES AND PROFILE SHAPES) AND ARTICLES (FOR EXAMPLE, DISCS AND RINGS), OF UNVULCANISED RUBBER:		
4006.10.00	-"Camel-back" strips for retreading rubber tyres	5%	0
4006.90.00	-Other	5%	0
4007.00.00	VULCANISED RUBBER THREAD AND CORD	5%	0
4008	PLATES, SHEETS, STRIP, RODS AND PROFILE SHAPES, OF VULCANISED RUBBER OTHER THAN HARD RUBBER:		
4008.1	-Of cellular rubber:		
4008.11.00	--Plates, sheets and strip	5%	0
4008.19.00	--Other	5%	0
4008.2	-Of non-cellular rubber:		
4008.21	--Plates, sheets and strip: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4008.21.10	---Natural rubber sheets produced by adding vulcanising agents directly to fresh field latex before coagulation, containing not less than 90% natural rubber hydrocarbons	0%	0
4008.21.90	---Other	5%	0
4008.29.00	--Other	5%	0
4009	TUBES, PIPES AND HOSES, OF VULCANISED RUBBER OTHER THAN HARD RUBBER, WITH OR WITHOUT THEIR FITTINGS (FOR EXAMPLE, JOINTS, ELBOWS, FLANGES):		
4009.1	-Not reinforced or otherwise combined with other materials:		
4009.11	--Without fittings:		
4009.11.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4009.11.90	---Other	5%	0
4009.12	--With fittings:		
4009.12.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4009.12.90	---Other	5%	0
4009.2	-Reinforced or otherwise combined only with metal:		
4009.21	--Without fittings:		
4009.21.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4009.21.90	---Other	5%	0
4009.22	--With fittings:		
4009.22.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4009.22.90	---Other	5%	0
4009.3	-Reinforced or otherwise combined only with textile materials:		
4009.31	--Without fittings:		
4009.31.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4009.31.90	---Other	5%	0
4009.32	--With fittings:		
4009.32.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4009.32.90	---Other	5%	0
4009.4	-Reinforced or otherwise combined with other materials:		
4009.41	--Without fittings:		
4009.41.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4009.41.90	---Other	5%	0
4009.42	--With fittings:		
4009.42.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4009.42.90	---Other	5%	0
4010	CONVEYOR OR TRANSMISSION BELTS OR BELTING, OF VULCANISED RUBBER:		
4010.1	-Conveyor belts or belting:		
4010.11.00	--Reinforced only with metal	5%	0
4010.12.00	--Reinforced only with textile materials	5%	0
4010.19.00	--Other	5%	0
4010.3	-Transmission belts or belting:		
4010.31.00	--Endless transmission belts of trapezoidal cross-section (V-belts), V-ribbed, of an outside circumference exceeding 60 cm but not exceeding 180 cm	5%	5
4010.32.00	--Endless transmission belts of trapezoidal cross-section (V-belts), other than V-ribbed, of an outside circumference exceeding 60 cm but not exceeding 180 cm	5%	5
4010.33.00	--Endless transmission belts of trapezoidal cross-section (V-belts), V-ribbed, of an outside circumference exceeding 180 cm but not exceeding 240 cm	5%	5
4010.34.00	--Endless transmission belts of trapezoidal cross-section (V-belts), other than V-ribbed, of an outside circumference exceeding 180 cm but not exceeding 240 cm	5%	3
4010.35.00	--Endless synchronous belts, of an outside circumference exceeding 60 cm but not exceeding 150 cm	5%	0
4010.36.00	--Endless synchronous belts, of an outside circumference exceeding 150 cm but not exceeding 198 cm	5%	0
4010.39.00	--Other	5%	5
4011	NEW PNEUMATIC TYRES, OF RUBBER:		
4011.10.00	-Of a kind used on motor cars (including station wagons and racing cars)	5%	0
4011.20.00	-Of a kind used on buses or lorries	5%	0
4011.30.00	-Of a kind used on aircraft	0%	0
4011.40.00	-Of a kind used on motorcycles	0%	0
4011.50.00	-Of a kind used on bicycles	0%	0
4011.6	-Other, having a "herring-bone" or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similar tread:		
4011.61.00	--Of a kind used on agricultural or forestry vehicles and machines	5%	0
4011.62.00	--Of a kind used on construction or industrial handling vehicles and machines and having a rim size not exceeding 61 cm	5%	0
4011.63.00	--Of a kind used on construction or industrial handling vehicles and machines and having a rim size exceeding 61 cm	5%	0
4011.69.00	--Other	5%	0
4011.9	-Other:		
4011.92.00	--Of a kind used on agricultural or forestry vehicles and machines	5%	0
4011.93.00	--Of a kind used on construction or industrial handling vehicles and machines and having a rim size not exceeding 61 cm	5%	0
4011.94.00	--Of a kind used on construction or industrial handling vehicles and machines and having a rim size exceeding 61 cm	5%	0
4011.99.00	--Other	5%	0
4012	RETREADED OR USED PNEUMATIC TYRES OF RUBBER; SOLID OR CUSHION TYRES, TYRE TREADS AND TYRE FLAPS, OF RUBBER:		
4012.1	-Retreaded tyres:		
4012.11.00	--Of a kind used on motor cars (including station wagons and racing cars)	5%	5
4012.12.00	--Of a kind used on buses or lorries	5%	5
4012.13.00	--Of a kind used on aircraft	5%	5
4012.19.00	--Other	5%	5
4012.20.00	-Used pneumatic tyres	5%	5
4012.90.00	-Other	5%	0
4013	INNER TUBES, OF RUBBER:		
4013.10.00	-Of a kind used on motor cars (including station wagons and racing cars), buses or lorries	5%	5
4013.20.00	-Of a kind used on bicycles	0%	0
4013.90.00	-Other	5%	0
4014	HYGIENIC OR PHARMACEUTICAL ARTICLES (INCLUDING TEATS), OF VULCANISED RUBBER OTHER THAN HARD RUBBER, WITH OR WITHOUT FITTINGS OF HARD RUBBER:		
4014.10.00	-Sheath contraceptives	0%	0
4014.90.00	-Other	5%	0
4015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INCLUDING GLOVES, MITTENS AND MITTS), FOR ALL PURPOSES, OF VULCANISED RUBBER OTHER THAN HARD RUBBER:		
4015.1	-Gloves, mittens and mitts:		
4015.11.00	--Surgical	5%	0
4015.19	--Other:		
4015.19.10	---Mittens and mitts, specially designed for use in sports	5%	0
4015.19.90	---Other	5%	0
4015.90	-Other:		
4015.90.10	---Diving dress, wetsuits, and similar garments	5%	0
4015.90.2	---Garments, NSA, other than: (a) aprons of a kind used for X-ray protection; or (b) pilches:		
4015.90.21	----Anti-radiation suits, anti-contamination suits, and similar protective garments	5%	0
4015.90.29	----Other	10%	5
4015.90.90	---Other	0%	0
4016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OTHER THAN HARD RUBBER:		
4016.10.00	-Of cellular rubber	5%	0
4016.9	-Other:		
4016.91.00	--Floor coverings and mats	5%	5
4016.92.00	--Erasers	5%	0
4016.93.00	--Gaskets, washers and other seals	5%	5
4016.94.00	--Boat or dock fenders, whether or not inflatable	5%	0
4016.95.00	--Other inflatable articles	5%	0
4016.99.00	--Other	5%	5
4017.00.00	HARD RUBBER (FOR EXAMPLE, EBONITE) IN ALL FORMS, INCLUDING WASTE AND SCRAP; ARTICLES OF HARD RUBBER	5%	0
41	RAW HIDES AND SKINS (OTHER THAN FURSKINS) AND LEATHER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4101	RAW HIDES AND SKINS OF BOVINE (INCLUDING BUFFALO) OR EQUINE ANIMALS (FRESH, OR SALTED, DRIED, LIMED, PICKLED OR OTHERWISE PRESERVED, BUT NOT TANNED, PARCHMENT-DRESSED OR FURTHER PREPARED), WHETHER OR NOT DEHAIRED OR SPLIT:		
4101.20.00	-Whole hides and skins, unsplit, of a weight per skin not exceeding 8 kg when simply dried, 10 kg when dry-salted, or 16 kg when fresh, wet-salted or otherwise preserved	0%	0
4101.50.00	-Whole hides and skins, of a weight exceeding 16 kg	0%	0
4101.90.00	-Other, including butts, bends and bellies	0%	0
4102	RAW SKINS OF SHEEP OR LAMBS (FRESH, OR SALTED, DRIED, LIMED, PICKLED OR OTHERWISE PRESERVED, BUT NOT TANNED, PARCHMENT-DRESSED OR FURTHER PREPARED), WHETHER OR NOT WITH WOOL ON OR SPLIT, OTHER THAN THOSE EXCLUDED BY NOTE 1(c) TO THIS CHAPTER:		
4102.10.00	-With wool on	0%	0
4102.2	-Without wool on:		
4102.21.00	--Pickled	0%	0
4102.29.00	--Other	0%	0
4103	OTHER RAW HIDES AND SKINS (FRESH, OR SALTED, DRIED, LIMED, PICKLED OR OTHERWISE PRESERVED, BUT NOT TANNED, PARCHMENT-DRESSED OR FURTHER PREPARED), WHETHER OR NOT DEHAIRED OR SPLIT, OTHER THAN THOSE EXCLUDED BY NOTE 1(b) OR 1(c) TO THIS CHAPTER:		
4103.20	-Of reptiles:		
4103.20.10	---Goods which have undergone a tanning (including pre-tanning) process which is reversible other than vegetable pre-tanning	5%	0
4103.20.90	---Other	0%	0
4103.30	-Of swine:		
4103.30.10	---Goods without hair on, which have undergone a tanning (including pre-tanning) process which is reversible	5%	0
4103.30.90	---Other	0%	0
4103.90	-Other:		
4103.90.20	---Of goats or kids	0%	0
4103.90.30	---Of camels (including dromedaries)	0%	0
4103.90.9	---Other:		
4103.90.91	----Goods without hair on, which have undergone a tanning (including pre-tanning) process which is reversible	5%	0
4103.90.99	----Other	0%	0
4104	TANNED OR CRUST HIDES AND SKINS OF BOVINE (INCLUDING BUFFALO) OR EQUINE ANIMALS, WITHOUT HAIR ON, WHETHER OR NOT SPLIT, BUT NOT FURTHER PREPARED:		
4104.1	-In the wet state (including wet-blue):		
4104.11	--Full grains, unsplit; grain splits:		
4104.11.10	---Pre-tanned	0%	0
4104.11.90	---Other	5%	0
4104.19	--Other:		
4104.19.10	---Pre-tanned	0%	0
4104.19.90	---Other	5%	0
4104.4	-In the dry state (crust):		
4104.41.00	--Full grains, unsplit; grain splits	5%	0
4104.49.00	--Other	5%	0
4105	TANNED OR CRUST SKINS OF SHEEP OR LAMBS, WITHOUT WOOL ON, WHETHER OR NOT SPLIT, BUT NOT FURTHER PREPARED:		
4105.10	-In the wet state (including wet-blue):		
4105.10.10	---Pre-tanned	0%	0
4105.10.90	---Other	5%	0
4105.30.00	-In the dry state (crust)	5%	0
4106	TANNED OR CRUST HIDES AND SKINS OF OTHER ANIMALS, WITHOUT WOOL OR HAIR ON, WHETHER OR NOT SPLIT, BUT NOT FURTHER PREPARED:		
4106.2	-Of goats or kids:		
4106.21	--In the wet state (including wet-blue):		
4106.21.10	---Pre-tanned	0%	0
4106.21.90	---Other	5%	0
4106.22.00	--In the dry state (crust)	5%	0
4106.3	-Of swine:		
4106.31.00	--In the wet state (including wet-blue)	5%	0
4106.32.00	--In the dry state (crust)	5%	0
4106.40	-Of reptiles: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4106.40.10	---Vegetable pre-tanned	0%	0
4106.40.90	---Other	5%	0
4106.9	-Other:		
4106.91.00	--In the wet state (including wet-blue)	5%	0
4106.92.00	--In the dry state (Crust)	5%	0
4107	LEATHER FURTHER PREPARED AFTER TANNING OR CRUSTING, INCLUDING PARCHMENT-DRESSED LEATHER, OF BOVINE (INCLUDING BUFFALO) OR EQUINE ANIMALS, WITHOUT HAIR ON, WHETHER OR NOT SPLIT, OTHER THAN LEATHER OF 4114:		
4107.1	-Whole hides and skins:		
4107.11.00	--Full grains, unsplit	5%	0
4107.12.00	--Grain splits	5%	0
4107.19.00	--Other	5%	0
4107.9	-Other, including sides:		
4107.91.00	--Full grains, unsplit	5%	0
4107.92.00	--Grain splits	5%	0
4107.99.00	--Other	5%	0
4112.00.00	LEATHER FURTHER PREPARED AFTER TANNING OR CRUSTING, INCLUDING PARCHMENT-DRESSED LEATHER, OF SHEEP OR LAMB, WITHOUT WOOL ON, WHETHER OR NOT SPLIT, OTHER THAN LEATHER OF 4114	5%	0
4113	LEATHER FURTHER PREPARED AFTER TANNING OR CRUSTING, INCLUDING PARCHMENT-DRESSED LEATHER, OF OTHER ANIMALS, WITHOUT WOOL OR HAIR ON, WHETHER OR NOT SPLIT, OTHER THAN LEATHER OF 4114:		
4113.10.00	-Of goats or kids	5%	0
4113.20.00	-Of swine	5%	0
4113.30.00	-Of reptiles	5%	0
4113.90.00	-Other	5%	0
4114	CHAMOIS (INCLUDING COMBINATION CHAMOIS) LEATHER; PATENT LEATHER AND PATENT LAMINATED LEATHER; METALLISED LEATHER:		
4114.10.00	-Chamois (including combination chamois) leather	5%	0
4114.20.00	-Patent leather and patent laminated leather; metallised leather	5%	0
4115	COMPOSITION LETHER WITH A BASIS OF LEATHER OR LEATHER FIBRE, IN SLABS, SHEETS OR STRIP, WHETHER OR NOT IN ROLLS; PARINGS AND OTHER WASTE OF LEATHER OR OF COMPOSITION LEATHER, NOT SUITABLE FOR THE MANUFACTURE OF LEATHER ARTICLES; LEATHER DUST, POWDER AND FLOUR:		
4115.10.00	-Composition leather with a basis of leather or leather fibre, in slabs, sheets or strip, whether or not in rolls	5%	0
4115.20.00	-Parings and other waste of leather or of composition leather, not suitable for the manufacture of leather articles; leather dust, powder and flour	0%	0
42	ARTICLES OF LEATHER; SADDLERY AND HARNESS; TRAVEL GOODS, HANDBAGS AND SIMILAR CONTAINERS; ARTICLES OF ANIMAL GUT (OTHER THAN SILK-WORM GUT)		
4201.00.00	SADDLERY AND HARNESS FOR ANY ANIMAL (INCLUDING TRACES, LEADS, KNEE PADS, MUZZLES, SADDLE CLOTHS, SADDLE BAGS, DOG COATS AND THE LIKE), OF ANY MATERIAL	5%	0
4202	TRUNKS, SUIT-CASES, VANITY-CASES, EXECUTIVE-CASES, BRIEF-CASES, SCHOOL SATCHELS, SPECTACLE CASES, BINOCULAR CASES, CAMERA CASES, MUSICAL INSTRUMENT CASES, GUN CASES, HOLSTERS AND SIMILAR CONTAINERS; TRAVELLING-BAGS, INSULTATED FOOD OR BEVERAGE BAGS, TOILET BAGS, RUCKSACKS, HANDBAGS, SHOPPING BAGS, WALLETS, PURSES, MAP-CASES, CIGARETTE-CASES, TOBACCO-POUCHES, TOOL BAGS, SPORTS BAGS, BOTTLE-CASES, JEWELLERY BOXES, POWDER-BOXES, CUTLERY CASES AND SIMILAR CONTAINERS, OF LEATHER OR OF COMPOSITION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LEATHER, OF SHEETING OF PLASTICS, OF TEXTILE MATERIALS, OF VULCANISED FIBRE OR OF PAPERBOARD, OR WHOLLY OR MAINLY COVERED WITH SUCH MATERIALS OR WITH PAPER:		
4202.1	-Trunks, suit-cases, vanity-cases, executive-cases, brief-cases, school satchels and similar containers:		
4202.11	--With outer surface of leather or of composition leather:		
4202.11.10	---Brief-cases, portfolios and the like	5%	0
4202.11.90	---Other	5%	0
4202.12	--With outer surface of plastics or of textile materials:		
4202.12.10	---Goods, as follows: (a) attache or executive-cases; (b) brief-cases, portfolios and the like; (c) suit-cases; (d) trunks	5%	0
4202.12.90	---Other	5%	0
4202.19.00	--Other	0%	0
4202.2	-Handbags, whether or not with shoulder strap, including those without handle:		
4202.21.00	--With outer surface of leather or of composition leather:	5%	0
4202.22.00	--With outer surface of plastic sheeting or of textile materials	5%	0
4202.29.00	--Other	0%	0
4202.3	-Articles of a kind normally carried in the pocket or in the handbag:		
4202.31	--With outer surface of leather or of composition leather:		
4202.31.10	---Goods, as follows: (a) billfolds; (b) coin purses; (c) key containers; (d) smoking requisites; (e) spectacle cases; (f) wallets and wallet-purses	5%	0
4202.31.90	---Other	5%	0
4202.32	--With outer surface of plastic sheeting or of textile materials:		
4202.32.10	---Goods, as follows: (a) billfolds; (b) coin purses; (c) key containers; (d) smoking requisites; (e) spectacle cases; (f) wallets and wallet-purses	5%	0
4202.32.90	---Other	0%	0
4202.39.00	--Other	0%	0
4202.9	-Other:		
4202.91	--With outer surface of leather or of composition leather:		
4202.91.10	---Goods, as follows: (a) golf bags; (b) gun, revolver and pistol cases and covers; (c) pen and pencil cases	5%	0
4202.91.90	---Other	5%	0
4202.92	--With outer surface of plastic sheeting or of textile materials:		
4202.92.10	---Goods, as follows: (a) golf bags; (b) gun, revolver and pistol cases and covers; (c) pen and pencil cases	5%	0
4202.92.90	---Other	5%	0
4202.99.00	--Other	5%	0
4203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OF LEATHER OR OF COMPOSITION LEATHER:		
4203.10.00	-Articles of apparel	10%	5
4203.2	-Gloves, mittens and mitts:		
4203.21	--Specially designed for use in sports:		
4203.21.10	---Mittens and mitts, of leather and furskin or of leather and artificial fur	5%	0
4203.21.90	---Other	0%	0
4203.29	--Other:		
4203.29.10	---Mittens and mitts, of leather and furskin or of leather and artificial fur	5%	0
4203.29.90	---Other	0%	0
4203.30.00	-Belts and bandoliers	5%	0
4203.40	-Other clothing accessories:		
4203.40.10	---Wrist straps	5%	0
4203.40.90	---Other	10%	5
4205	OTHER ARTICLES OF LEATHER OR OF COMPOSITION LEATHER:		
4205.00.10	---Parts of coats, jackets, and the like	10%	5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4205.00.20	---Articles of leather or of composition leather, of a kind used on machinery or mechanical appliances or for other technical uses	5%	0
4205.00.90	---Other	5%	0
4206.00.00	ARTICLES OF GUT (OTHER THAN SILK-WORM GUT), OF GOLDBEATER'S SKIN, OF BLADDERS OR OF TENDONS	0%	0
43	FURSKINS AND ARTIFICIAL FUR; MANUFACTURES THEREOF		
4301	RAW FURSKINS (INCLUDING HEADS, TAILS, PAWS AND OTHER PIECES OR CUTTINGS, SUITABLE FOR FURRIERS' USE), OTHER THAN RAW HIDES AND SKINS OF 4101, 4102 OR 4103:		
4301.10.00	-Of mink, whole, with or without head, tail or paws	0%	0
4301.30.00	-Of lamb, the following: Astrakhan, Broadtail, Caracul, Persian and similar lamb, Indian, Chinese, Mongolian or Tibetan lamb, whole, with or without head, tail or paws	0%	0
4301.60.00	-Of fox, whole, with or without head, tail or paws	0%	0
4301.80.00	-Other furskins, whole, with or without head, tail or paws	0%	0
4301.90.00	-Heads, tails, paws and other pieces or cuttings, suitable for furriers' use	0%	0
4302	TANNED OR DRESSED FURSKINS (INCLUDING HEADS, TAILS, PAWS AND OTHER PIECES OR CUTTINGS), UNASSEMBLED, OR ASSEMBLED (WITHOUT THE ADDITION OF OTHER MATERIALS) OTHER THAN THOSE OF 4303:		
4302.1	-Whole skins, with or without head, tail or paws, not assembled:		
4302.11.00	--Of mink	5%	0
4302.19	--Other:		
4302.19.10	---Of rabbit or hare	5%	0
4302.19.90	---Other	5%	0
4302.20.00	-Heads, tails, paws and other pieces or cuttings, not assembled	5%	0
4302.30.00	-Whole skins and pieces or cuttings thereof, assembled	5%	0
4303	ARTICLES OF APPAREL, CLOTHING ACCESSORIES AND OTHER ARTICLES OF FURSKIN:		
4303.10.00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5%	0
4303.90.00	-Other	5%	0
4304	ARTIFICIAL FUR AND ARTICLES THEREOF:		
4304.00.10	---Articles partly or wholly made up	5%	0
4304.00.90	---Other	5%	0
44	WOOD AND ARTICLES OF WOOD; WOOD CHARCOAL		
4401	FUEL WOOD, IN LOGS, IN BILLETS, IN TWIGS, IN FAGGOTS OR IN SIMILAR FORMS; WOOD IN CHIPS OR PARTICLES; SAWDUST AND WOOD WASTE AND SCRAP, WHETHER OR NOT AGGLOMERATED IN LOGS, BRIQUETTES, PELLETS OR SIMILAR FORMS:		
4401.10.00	-Fuel wood, in logs, in billets, in twigs, in faggots or in similar forms	0%	0
4401.2	-Wood in chips or particles:		
4401.21.00	--Coniferous	5%	0
4401.22.00	--Non-coniferous	5%	0
4401.3	-Sawdust and wood waste and scrap, whether or not agglomerated in logs, briquettes, pellets or similar forms:		
4401.31.00	--Wood pellets	0%	0
4401.39.00	--Other	0%	0
4402	WOOD CHARCOAL (INCLUDING SHELL OR NUT CHARCOAL), WHETHER OR NOT AGGLOMERATED:		
4402.10.00	-Of bamboo	0%	0
4402.90.00	-Other	0%	0
4403	WOOD IN THE ROUGH, WHETHER OR NOT STRIPPED OF BARK OR SAPWOOD, OR ROUGHLY SQUARED:		
4403.10.00	-Treated with paint, stains, creosote or other preservatives	0%	0
4403.20.00	-Other, coniferous	0%	0
4403.4	-Other, of tropical wood specified in Subheading Note 2 to this Chapter:		
4403.41.00	--Dark Red Meranti, Light Red Meranti and Meranti Bakau	0%	0
4403.49.00	--Other	0%	0
4403.9	-Other:		
4403.91.00	--Of oak (Quercus spp.)	0%	0
4403.92.00	--Of beech (Fagus spp.)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4403.99.00	--Other	0%	0
4404	HOOPWOOD; SPLIT POLES; PILES, PICKETS AND STAKES OF WOOD, POINTED BUT NOT SAWN LENGTHWISE; WOODEN STICKS, ROUGHLY TRIMMED BUT NOT TURNED, BENT OR OTHERWISE WORKED, SUITABLE FOR THE MANUFACTURE OF WALKING-STICKS, UMBRELLAS, TOOL HANDLES OR THE LIKE; CHIPWOOD AND THE LIKE:		
4404.10.00	-Coniferous	5%	0
4404.20.00	-Non-coniferous	5%	0
4405.00.00	WOOD WOOL; WOOD FLOUR	0%	0
4406	RAILWAY OR TRAMWAY SLEEPERS (CROSS-TIES) OF WOOD:		
4406.10.00	-Not impregnated	5%	0
4406.90.00	-Other	5%	0
4407	WOOD SAWN OR CHIPPED LENGTHWISE, SLICED OR PEELED, WHETHER OR NOT PLANED, SANDED OR END-JOINTED, OF A THICKNESS EXCEEDING 6 mm:		
4407.10	-Coniferous:		
4407.10.10	---Planed or sanded	5%	0
4407.10.9	---Other:		
4407.10.91	----Wood, as follows: (a) redwood (Sequoia sempervirens); (b) western red cedar (Thuja plicata); (c) cut to size for making staves; (d) having a cross-sectional area of 450 cm2 or greater	0%	0
4407.10.99	----Other	5%	0
4407.2	-Of tropical wood specified in Subheading Note 2 to this Chapter:		
4407.21.00	--Mahogany (Swietenia spp.)	0%	0
4407.22.00	--Virola, Imbuia and Balsa	0%	0
4407.25	--Dark Red Meranti, Light Red Meranti and Meranti Bakau:		
4407.25.10	---Planed or sanded	5%	0
4407.25.90	---Other	5%	0
4407.26.00	--White Lauan, White Meranti, White Seraya, Yellow Meranti and Alan	0%	0
4407.27	--Sapelli:		
4407.27.10	---Planed or sanded	5%	0
4407.27.90	---Other	0%	0
4407.28	--Iroko:		
4407.28.10	---Planed or sanded	5%	0
4407.28.90	---Other	0%	0
4407.29	--Other:		
4407.29.10	---Planed or sanded	5%	0
4407.29.9	---Other:		
4407.29.91	----Mandioqueira, Pau Amarelo, Quaruba and Tauari	5%	0
4407.29.99	----Other	0%	0
4407.9	-Other:		
4407.91	--Of oak (Quercus spp.):		
4407.91.10	---Planed or sanded	5%	0
4407.91.90	---Other	5%	0
4407.92.00	--Of beech (Fagus spp.)	0%	0
4407.93	--Of Maple (Acer spp.):		
4407.93.10	---Planed or sanded	5%	0
4407.93.90	---Other	5%	0
4407.94	--Of cherry (Prunus spp.):		
4407.94.10	---Planed or sanded	5%	0
4407.94.90	---Other	5%	0
4407.95	--Of ash (Fraxinus spp.):		
4407.95.10	---Planed or sanded	5%	0
4407.95.90	---Other	5%	0
4407.99	--Other:		
4407.99.10	---Planed or sanded	5%	0
4407.99.9	---Other:		
4407.99.91	----Ebony (Diospyros spp.)	0%	0
4407.99.99	----Other	5%	0
4408	SHEETS FOR VENEERING (INCLUDING THOSE OBTAINED BY SLICING LAMINATED WOOD), FOR PLYWOOD OR FOR SIMILAR LAMINATED WOOD AND OTHER WOOD, SAWN LENGTHWISE, SLICED OR PEELED, WHETHER OR NOT PLANED, SANDED, SPLICED OR END-JOINTED, OF A THICKNESS NOT EXCEEDING 6 mm:		
4408.10	-Coniferous:		
4408.10.1	---Sheets for veneering obtained by slicing laminated wood:		
4408.10.11	----In the form of plywood	5%	0
4408.10.12	----Other, with at least one outer ply of non-coniferous wood, other than Mandioqueira, Pau Amarelo, Quaruba or Tauari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4408.10.13	----Other, with at least one ply of tropical wood specified in Subheading Note 2 to this Chapter, other than Mandioqueira, Pau Amarelo, Quaruba or Tauari	0%	0
4408.10.19	----Other	5%	0
4408.10.90	---Other	5%	0
4408.3	-Of tropical wood specified in Subheading Note 2 to this Chapter:		
4408.31	--Dark Red Meranti, Light Red Meranti and Meranti Bakau:		
4408.31.1	---Sheets for veneering obtained by slicing laminated wood, with at least one ply of Dark Red Meranti, Light Red Meranti or Meranti Bakau:		
4408.31.11	----In the form of plywood	5%	0
4408.31.12	----Other, with at least one outer ply of non-coniferous wood, including Dark Red Meranti, Light Red Meranti or Meranti Bakau	5%	0
4408.31.19	----Other, containing at least one ply of Dark Red Meranti, Light Red Meranti or Meranti Bakau	0%	0
4408.31.90	---Other	5%	0
4408.39	--Other:		
4408.39.1	---Sheets for veneering obtained by slicing laminated wood, with at least one ply of tropical wood specified in Subheading Note 2 to this Chapter:		
4408.39.11	----In the form of plywood	5%	0
4408.39.12	----Other, with at least one outer ply of non-coniferous wood specified in Subheading Note 2 to this chapter, including Mandioqueira, Pau Amarelo, Quaruba or Tauari	5%	0
4408.39.13	----Other, with at least one ply of tropical wood specified in Subheading Note 2 to this chapter, other than Mandioqueira, Pau Amarelo, Quaruba or Tauari	0%	0
4408.39.19	----Other	5%	0
4408.39.90	---Other	5%	0
4408.90	-Other:		
4408.90.1	---Sheets for veneering obtained by slicing laminated wood:		
4408.90.11	----In the form of plywood	5%	0
4408.90.12	----Other, with at least one outer ply of non-coniferous wood, other than Mandioqueira, Pau Amarelo, Quaruba or Tauari, and containing at least one layer of particle board	5%	0
4408.90.13	----Other, with at least one ply of tropical wood specified in Subheading Note 2 to this chapter, other than Mandioqueira, Pau Amarelo, Quaruba or Tauari, and containing at least one layer of particle board	5%	0
4408.90.14	----Other, containing at least one layer of particle board	0%	0
4408.90.19	----Other	5%	0
4408.90.90	---Other	5%	0
4409	WOOD (INCLUDING STRIPS AND FRIEZES FOR PARQUET FLOORINGS, NOT ASSEMBLED) CONTINUOUSLY SHAPED (TONGUED, GROOVED, REBATED, CHAMFERED, V-JOINTED, BEADED, MOULDED, ROUNDED OR THE LIKE) ALONG ANY OF ITS EDGES, ENDS OR FACES, WHETHER OR NOT PLANED, SANDED OR END-JOINTED:		
4409.10.00	-Coniferous	5%	0
4409.2	-Non-coniferous:		
4409.21.00	--Of bamboo	5%	0
4409.29.00	--Other	5%	0
4410	PARTICLE BOARD, ORIENTED STRAND BOARD (OSB) AND SIMILAR BOARD (FOR EXAMPLE, WAFER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 WHETHER OR NOT AGGLOMERATED WITH RESINS OR OTHER ORGANIC BINDING SUBSTANCES:		
4410.1	-Of wood:		
4410.11.00	--Particle board	5%	0
4410.12.00	--Oriented strand board (OSB)	5%	0
4410.19.00	--Other	5%	0
4410.90.00	-Other	5%	0
4411	FIBRE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 WHETHER OR NOT BONDED WITH RESINS OR OTHER ORGANIC SUBSTANCES:		
4411.1	-Medium density fibreboard (MDF):		
4411.12	--Of a thickness not exceeding 5 mm:		
4411.12.10	---Of a density exceeding 0.8 g/cm3	5%	0
4411.12.90	---Other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4411.13	--Of a thickness exceeding 5 mm but not exceeding 9 mm:		
4411.13.10	---Of a density exceeding 0.8 g/cm3	5%	0
4411.13.90	---Other	5%	0
4411.14	--Of a thickness exceeding 9 mm:		
4411.14.10	---Of a density exceeding 0.8 g/cm3	5%	0
4411.14.90	---Other	5%	0
4411.9	-Other:		
4411.92.00	--Of a density exceeding 0.8 g/cm3	5%	0
4411.93.00	--Of a density exceeding 0.5 g/cm3 but not exceeding 0.8 g/cm3	5%	0
4411.94.00	--Of a density not exceeding 0.5 g/cm3	5%	0
4412	PLYWOOD, VENEERED PANELS AND SIMILAR LAMINATED WOOD:		
4412.10	-Of bamboo:		
4412.10.10	---Plywood	5%	0
4412.10.2	---Containing at least one layer of particle board:		
4412.10.21	----Goods, as follows: (a) with at least one outer ply of non-coniferous wood (including bamboo); (b) with at least one ply of tropical wood specified in Additional Note 1 to this Chapter	5%	0
4412.10.29	----Other	0%	0
4412.10.30	---Other, with at least one ply of tropical wood specified in Additional Note 1 to this Chapter	0%	0
4412.10.90	---Other	5%	0
4412.3	-Other plywood, consisting solely of sheets of wood (other than bamboo), each ply not exceeding 6 mm thickness:		
4412.31.00	--With at least one outer ply of tropical wood specified in Subheading Note 2 to this Chapter	5%	0
4412.32.00	--Other, with at least one outer ply of non-coniferous wood	5%	0
4412.39.00	--Other	5%	0
4412.9	-Other:		
4412.94	--Blockboard, laminboard and battenboard:		
4412.94.2	---With at least one ply of tropical wood specified in Additional Note 1 to this Chapter:		
4412.94.21	----Containing one of the following woods: (a) Mandioqueira; (b) Pau Amarelo; (c) Quaruba; (d) Tauari	5%	0
4412.94.29	----Other	0%	0
4412.94.30	---Other, with at least one outer ply of non-coniferous wood	5%	0
4412.94.90	---Other	5%	0
4412.99	--Other:		
4412.99.2	---With at least one ply of tropical wood specified in Additional Note 1 to this Chapter:		
4412.99.21	----Goods containing at least one layer of particle board and one of the following woods, other than plywood: (a) Mandioqueira; (b) Pau Amarelo; (c) Quaruba; (d) Tauari	0%	0
4412.99.22	----Goods, NSA, as follows: (a) containing at least one layer of particle board; (b) plywood	5%	0
4412.99.23	----Other, containing one of the following woods: (a) Mandioqueira; (b) Pau Amarelo; (c) Quaruba; (d) Tauari	5%	0
4412.99.29	----Other	0%	0
4412.99.3	---Other, with at least one outer ply of non-coniferous wood:		
4412.99.31	----Goods, as follows: (a) containing at least one layer of particle board; (b) plywood	5%	0
4412.99.39	----Other	5%	0
4412.99.40	---Other, containing one layer of particle board	0%	0
4412.99.9	---Other:		
4412.99.91	----Plywood	5%	0
4412.99.99	----Other	5%	0
4413.00.00	DENSIFIED WOOD, IN BLOCKS, PLATES, STRIPS OR PROFILE SHAPES	5%	0
4414.00.00	WOODEN FRAMES FOR PAINTINGS, PHOTOGRAPHS, MIRRORS OR SIMILAR OBJECTS	5%	0
4415	PACKING CASES, BOXES, CRATES, DRUMS AND SIMILAR PACKINGS, OF WOOD; CABLE-DRUMS OF WOOD; PALLETS, BOX PALLETS AND OTHER LOAD BOARDS, OF WOOD; PALLET COLLARS OF WOOD:		
4415.10.00	-Cases, boxes, crates, drums and similar packings; cable-drums	5%	0
4415.20.00	-Pallets, box pallets and other load boards; pallet collars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4416.00.00	CASKS, BARRELS, VATS, TUBS AND OTHER COOPERS' PRODUCTS AND PARTS THEREOF, OF WOOD, INCLUDING STAVES	5%	0
4417.00.00	TOOLS, TOOL BODIES, TOOL HANDLES, BROOM OR BRUSH BODIES AND HANDLES, OF WOOD; BOOT OR SHOE LASTS AND TREES, OF WOOD	0%	0
4418	BUILDERS' JOINERY AND CARPENTRY OF WOOD, INCLUDING CELLULAR WOOD PANELS, ASSEMBLED FLOORING PANELS, SHINGLES AND SHAKES:		
4418.10.00	-Windows, French-windows and their frames	5%	0
4418.20.00	-Doors and their frames and thresholds	5%	0
4418.40.00	-Shuttering for concrete constructional work	5%	0
4418.50.00	-Shingles and shakes	5%	0
4418.60.00	-Posts and beams	5%	0
4418.7	-Assembled flooring panels:		
4418.71.00	--For mosaic floors	5%	0
4418.72	--Other, multilayer:		
4418.72.10	---Parquet panels	5%	0
4418.72.90	---Other	5%	0
4418.79	--Other:		
4418.79.10	---Parquet panels	5%	0
4418.79.90	---Other	5%	0
4418.90.00	-Other	5%	0
4419.00.00	TABLEWARE AND KITCHENWARE, OF WOOD	5%	0
4420	WOOD MARQUETRY AND INLAID WOOD; CASKETS AND CASES FOR JEWELLERY OR CUTLERY, AND SIMILAR ARTICLES, OF WOOD; STATUETTES AND OTHER ORNAMENTS, OF WOOD; WOODEN ARTICLES OF FURNITURE NOT FALLING IN CHAPTER 94:		
4420.10.00	-Statuettes and other ornaments, of wood	5%	0
4420.90.00	-Other	5%	0
4421	OTHER ARTICLES OF WOOD:		
4421.10.00	-Clothes hangers	0%	0
4421.90.00	-Other	5%	0
45	CORK AND ARTICLES OF CORK		
4501	NATURAL CORK, RAW OR SIMPLY PREPARED; WASTE CORK; CRUSHED, GRANULATED OR GROUND CORK:		
4501.10.00	-Natural cork, raw or simply prepared	0%	0
4501.90.00	-Other	0%	0
4502.00.00	NATURAL CORK, DEBACKED OR ROUGHLY SQUARED, OR IN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BLOCKS, PLATES, SHEETS OR STRIP (INCLUDING SHARP-EDGED BLANKS FOR CORKS OR STOPPERS)	0%	0
4503	ARTICLES OF NATURAL CORK:		
4503.10.00	-Corks and stoppers	0%	0
4503.90.00	-Other	0%	0
4504	AGGLOMERATED CORK (WITH OR WITHOUT A BINDING SUBSTANCE) AND ARTICLES OF AGGLOMERATED CORK:		
4504.10.00	-Blocks, plates, sheets and strip; tiles of any shape; solid cylinders, including discs	5%	0
4504.90.00	-Other	5%	0
46	MANUFACTURES OF STRAW, OF ESPARTO OR OF OTHER PLAITING MATERIALS; BASKETWARE AND WICKERWORK		
4601	PLAITS AND SIMILAR PRODUCTS OF PLAITING MATERIA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TO STRIPS; PLAITING MATERIALS, PLAITS AND SIMILAR PRODUCTS OF PLAITING MATERIALS, BOUND TOGETHER IN PARALLEL STRANDS OR WOVEN, IN SHEET FORM, WHETHER OR NOT BEING FINISHED ARTICLES (FOR EXAMPLE, MATS, MATTING, SCREENS):		
4601.2	-Mats, matting and screens of vegetable materials:		
4601.21.00	--Of bamboo	0%	0
4601.22.00	--Of rattan	0%	0
4601.29.00	--Other	0%	0
4601.9	-Other:		
4601.92.00	--Of bamboo	0%	0
4601.93.00	--Of rattan	0%	0
4601.94.00	--Of other vegetable materials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4601.99.00	--Other	0%	0
4602	BASKETWORK, WICKERWORK AND OTHER ARTICLES, MADE DIRECTLY TO SHAPE FROM PLAITING MATERIALS OR MADE UP FROM GOODS OF 4601; ARTICLES OF LOOFAH:		
4602.1	-Of vegetable materials:		
4602.11.00	--Of bamboo	0%	0
4602.12.00	--Of rattan	0%	0
4602.19.00	--Other	0%	0
4602.90.00	-Other	0%	0
47	PULP OF WOOD OR OF OTHER FIBROUS CELLULOSIC MATERIAL; RECOVERED (WASTE AND SCRAP) PAPER AND PAPERBOARD		
4701.00.00	MECHANICAL WOOD PULP	0%	0
4702.00.00	CHEMICAL WOOD PULP, DISSOLVING GRADES	0%	0
4703	CHEMICAL WOOD PULP, SODA OR SULPHATE, OTHER THAN DISSOLVING GRADES:		
4703.1	-Unbleached:		
4703.11.00	--Coniferous	0%	0
4703.19.00	--Non-coniferous	0%	0
4703.2	-Semi-bleached or bleached:		
4703.21.00	--Coniferous	0%	0
4703.29.00	--Non-coniferous	0%	0
4704	CHEMICAL WOOD PULP, SULPHITE, OTHER THAN DISSOLVING GRADES:		
4704.1	-Unbleached:		
4704.11.00	--Coniferous	0%	0
4704.19.00	--Non-coniferous	0%	0
4704.2	-Semi-bleached or bleached:		
4704.21.00	--Coniferous	0%	0
4704.29.00	--Non-coniferous	0%	0
4705.00.00	WOOD PULP OBTAINED BY A COMBINATION OF MECHANICAL AND CHEMICAL PULPING PROCESSES	0%	0
4706	PULPS OF FIBRES DERIVED FROM RECOVERED (WASTE AND SCRAP) PAPER OR PAPERBOARD OR OF OTHER FIBROUS CELLULOSIC MATERIAL:		
4706.10.00	-Cotton linters pulp	0%	0
4706.20.00	-Pulps of fibres derived from recovered (waste and scrap) paper or paperboard	0%	0
4706.30.00	-Other, of bamboo	0%	0
4706.9	-Other:		
4706.91.00	--Mechanical	0%	0
4706.92.00	--Chemical	0%	0
4706.93.00	--Obtained by a combination of mechanical and chemical processes	0%	0
4707	RECOVERED (WASTE AND SCRAP) PAPER OR PAPERBOARD:		
4707.10.00	-Unbleached kraft paper or paperboard or corrugated paper or paperboard	0%	0
4707.20.00	-Other paper or paperboard made mainly of bleached chemical pulp, not coloured in the mass	0%	0
4707.30.00	-Paper or paperboard made mainly of mechanical pulp (for example, newspapers, journals and similar printed matter)	0%	0
4707.90.00	-Other, including unsorted waste and scrap	0%	0
48	PAPER AND PAPERBOARD; ARTICLES OF PAPER PULP, OF PAPER OR OF PAPERBOARD		
4801	NEWSPRINT, IN ROLLS OR SHEETS:		
4801.00.10	---Not containing fibres obtained by a mechanical process or of which not more than 10%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such fibres	5%	0
4801.00.20	---Of which more than 10% but less than 65%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fibres obtained by a mechanical process	5%	0
4801.00.3	---Of which 65% or more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fibres obtained by a mechanical process:		
4801.00.31	----Goods, as follows: (a) weighing more than 57 g/m2; or (b) having an ash content by weight of more than 8%	5%	0
4801.00.39	----Other	0%	0
4802	UNCOATED PAPER AND PAPERBOARD, OF A KIND USED FOR WRITING, PRINTING OR OTHER GRAPHIC PURPOSES, AND NON PERFORATED PUNCH-CARDS AND PUNCH TAPE PAPER, IN ROLLS OR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OF ANY SIZE, OTHER THAN PAPER OF 4801 OR 4803; HAND-MADE PAPER AND PAPERBOARD:		
4802.10.00	-Hand-made paper and paperboard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4802.20	-Paper and paperboard of a kind used as a base for photo-sensitive, heat-sensitive or electro-sensitive paper or paperboard:		
4802.20.2	---Dyeline base paper and paperboard:		
4802.20.21	----Goods, as follows: (a) in strips or rolls of a width not exceeding 15 cm; (b) in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in which no side exceeds 36 cm, in the unfolded state; (c) in rectangular sheets with one side exceeding 36 cm and the other side not exceeding 15 cm, in the unfolded state	5%	0
4802.20.22	---Containing paper or paperboard made mainly from pulp obtained by a chemi-mechanical process, as follows: (a) weighing not more than 22 g/m2; (b) weighing more than 205 g/m2	5%	0
4802.20.29	----Other	5%	0
4802.20.3	---Goods, NSA, weighing more than 22 g/m2 but not more than 205 g/m2:		
4802.20.31	----Goods, as follows: (a) in strips or rolls of a width not exceeding 15 cm; (b) in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in which no side exceeds 36 cm, in the unfolded state; (c) in rectangular sheets with one side exceeding 36 cm and the other side not exceeding 15 cm, in the unfolded state	5%	0
4802.20.39	----Other	5%	0
4802.20.4	---Goods, NSA, as follows: (a) weighing not more than 22 g/m2; (b) weighing more than 205 g/m2:		
4802.20.41	----Goods, as follows: (a) in strips or rolls of a width not exceeding 15 cm; (b) in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in which no side exceeds 36 cm, in the unfolded state; (c) in rectangular sheets with one side exceeding 36 cm and the other side not exceeding 15 cm, in the unfolded state	5%	0
4802.20.49	----Other	5%	0
4802.40	-Wallpaper base:		
4802.40.10	---Goods, as follows: (a) in strips or rolls of a width not exceeding 15 cm; (b) in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in which no side exceeds 36 cm, in the unfolded state; (c) in rectangular sheets with one side exceeding 36 cm and the other side not exceeding 15 cm, in the unfolded state	5%	0
4802.40.20	---Goods, NSA, containing paper or paperboard made mainly from pulp obtained by a chemi-mechanical process, as follows: (a) weighing not more than 22 g/m2; (b) weighing 205 g/m2 or more	5%	0
4802.40.90	---Other	5%	0
4802.5	-Other paper and paperboard, not containing fibres obtained by a mechanical or chemi-mechanical process or of which not more than 10%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such fibres:		
4802.54	--Weighing less than 40 g/m2:		
4802.54.10	---Goods, as follows: (a) in strips or rolls of a width not exceeding 15 cm;(b) in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in which no side exceeds 36 cm, in the unfolded state; (c) in rectangular sheets with one side exceeding 36 cm and the other side not exceeding 15 cm, in the unfolded state	5%	0
4802.54.2	---Goods, NSA, containing more than 5% of fibres made mainly from pulp obtained by a chemi-mechanical process:		
4802.54.21	----Goods, as follows: (a) 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b) weighing more than 22 g/m2	5%	0
4802.54.29	----Other	5%	0
4802.54.90	---Other	5%	0
4802.55	--Weighing 40 g/m2 or more but not more than 150 g/m2, in rolls:		
4802.55.10	---Of a width not exceeding 15 cm	5%	0
4802.55.90	---Other	5%	0
4802.56	--Weighing 40 g/m2 or more but not more than 150 g/m2, in sheets with one side not exceeding 435 mm and the other side not exceeding 297 mm, in the unfolded state:		
4802.56.10	---Goods, as follows: (a) in strips of a width not exceeding 15 cm; (b) in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in which no side exceeds 36 cm, in the unfolded state; (c) in rectangular sheets with one side exceeding 36 cm and the other side not exceeding 15 cm, in the unfolded state	5%	0
4802.56.90	---Other	5%	0
4802.57	--Other, weighing 40 g/m2 or more but not more than 150 g/m2: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4802.57.10	---Goods, as follows: (a) in strips or rolls of a width not exceeding 15 cm; (b) in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in which no side exceeds 36 cm, in the unfolded state; (c) in rectangular sheets with one side exceeding 36 cm and the other side not exceeding 15 cm, in the unfolded state	5%	0
4802.57.90	---Other	5%	0
4802.58	--Weighing more than 150 g/m2:		
4802.58.1	---Weighing not more than 205 g/m2:		
4802.58.11	----Goods, as follows: (a) in strips or rolls of a width not exceeding 15 cm; (b) in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in which no side exceeds 36 cm, in the unfolded state; (c) in rectangular sheets with one side exceeding 36 cm and the other side not exceeding 15 cm, in the unfolded state	5%	0
4802.58.12	----Goods, NSA, containing more than 5% of fibres made mainly from pulp obtained by a chemi-mechanical process	5%	0
4802.58.19	----Other	5%	0
4802.58.9	---Weighing more than 205 g/m2:		
4802.58.91	----Goods, as follows: (a) in strips or rolls of a width not exceeding 15 cm; (b) in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in which no side exceeds 36 cm, in the unfolded state; (c) in rectangular sheets with one side exceeding 36 cm and the other side not exceeding 15 cm, in the unfolded state	5%	0
4802.58.92	----Goods, NSA, as follows: (a) 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b) containing more than 5% of fibres made mainly from pulp obtained by a chemi-mechanical process	5%	0
4802.58.99	----Other	5%	0
4802.6	-Other paper and paperboard, of which more than 10%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fibres obtained by a mechanical or chemi-mechanical process:		
4802.61	--In rolls:		
4802.61.10	---Not exceeding 15 cm in width	5%	0
4802.61.2	---Goods, NSA, not containing fibres obtained by a mechanical process or of which not more than 10%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such fibres, other than goods of 4802.61.4 or 4802.61.5:		
4802.61.21	----Weighing 150 g/m2 or less	5%	0
4802.61.22	----Weighing more than 150 g/m2 but not more than 205 g/m2	5%	0
4802.61.29	----Other	5%	0
4802.61.30	---Paper, of which more than 10%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fibres obtained by a mechanical process, other than newsprint of 4802.61.4, as follows: (a) having a water absorbency, when tested by the one-minute Cobb method, of not less than 45 g/m2; (b) containing not less than 70% of mechanical woodpulp; and (c) weighing 40 g/m2 or more but not more than 62 g/m2	0%	0
4802.61.4	---Newsprint, in rolls exceeding 15 cm but not exceeding 36 cm in width:		
4802.61.41	----Not containing fibres obtained by a mechanical process or of which not more than 10%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such fibres	5%	0
4802.61.42	----Of which more than 10% but less than 65%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fibres obtained by a mechanical process	5%	0
4802.61.43	----Of which 65% or more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fibres obtained by a mechanical process, as follows: (a) weighing more than 57 g/m2; or (b) having an ash content by weight of more than 8%	5%	0
4802.61.49	----Other	0%	0
4802.61.5	---Goods, NSA, made mainly from pulp obtained by a chemi-mechanical process:		
4802.61.51	----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weighing not more than 205 g/m2	5%	0
4802.61.52	----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weighing more than 205 g/m2	5%	0
4802.61.53	----Goods, NSA, as follows: (a) weighing not more than 22 g/m2; (b) weighing more than 205 g/m2	5%	0
4802.61.59	----Other	5%	0
4802.61.90	---Other	5%	0
4802.62	--In sheets with one side not exceeding 435 mm and the other side not exceeding 297 mm in the unfolded state: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4802.62.10	---Goods, as follows: (a) in strips or rolls of a width not exceeding 15 cm; (b) in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in which no side exceeds 36 cm, in the unfolded state; (c) in rectangular sheets with one side exceeding 36 cm and the other side not exceeding 15 cm, in the unfolded state	5%	0
4802.62.2	---Not containing fibres obtained by a mechanical process or of which not more than 10%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such fibres, other than goods of 4802.62.4 or 4802.62.5:		
4802.62.21	----Weighing 150 g/m2 or less	5%	0
4802.62.22	----Weighing more than 150 g/m2 but not more than 205 g/m2	5%	0
4802.62.29	----Other	5%	0
4802.62.30	---Paper, of which more than 10%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fibres obtained by a mechanical process, other than newsprint of 4802.62.4, as follows: (a) having a water absorbency, when tested by the one-minute Cobb method, of not less than 45 g/m2; (b) containing not less than 70% of mechanical woodpulp; and (c) weighing 40 g/m2 or more but not more than 62 g/m2	0%	0
4802.62.4	---Newsprint, NSA:		
4802.62.41	----Not containing fibres obtained by a mechanical process or of which not more than 10%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such fibres	5%	0
4802.62.42	----Of which more than 10% but less than 65%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fibres obtained by a mechanical process	5%	0
4802.62.43	----Of which 65% or more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fibres obtained by a mechanical process, as follows: (a) weighing more than 57 g/m2; or (b) having an ash content by weight of more than 8%	5%	0
4802.62.49	----Other	0%	0
4802.62.5	---Goods, NSA, made mainly from pulp obtained by a chemi-mechanical process:		
4802.62.51	----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weighing not more than 205 g/m2	5%	0
4802.62.52	----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weighing more than 205 g/m2	5%	0
4802.62.53	----Goods, NSA, as follows: (a) weighing not more than 22 g/m2; (b) weighing more than 205 g/m2	5%	0
4802.62.59	----Other	5%	0
4802.62.90	---Other	5%	0
4802.69	--Other:		
4802.69.10	---Goods, as follows: (a) in strips or rolls of a width not exceeding 15 cm; (b) in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in which no side exceeds 36 cm, in the unfolded state; (c) in rectangular sheets with one side exceeding 36 cm and the other side not exceeding 15 cm, in the unfolded state	5%	0
4802.69.2	---Not containing fibres obtained by a mechanical process or of which not more than 10%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such fibres, other than goods of 4802.69.4 or 4802.69.5:		
4802.69.21	----Weighing 150 g/m2 or less	5%	0
4802.69.22	----Weighing more than 150 g/m2 but not more than 205 g/m2	5%	0
4802.69.29	----Other	5%	0
4802.69.30	---Paper, of which more than 10%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fibres obtained by a mechanical process, other than newsprint of 4802.62.4, as follows: (a) having a water absorbency, when tested by the one-minute Cobb method, of not less than 45 g/m2; (b) containing not less than 70% of mechanical woodpulp; and (c) weighing 40 g/m2 or more but not more than 62 g/m2	0%	0
4802.69.4	---Newsprint, NSA:		
4802.69.41	----Not containing fibres obtained by a mechanical process or of which not more than 10%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such fibres	5%	0
4802.69.42	----Of which more than 10% but less than 65%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fibres obtained by a mechanical process	5%	0
4802.69.43	----Of which 65% or more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fibres obtained by a mechanical process, as follows: (a) weighing more than 57 g/m2; or (b) having an ash content by weight of more than 8%	5%	0
4802.69.49	----Other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4802.69.5	---Goods, NSA, made mainly from pulp obtained by a chemi-mechanical process:		
4802.69.51	----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weighing not more than 205 g/m2	5%	0
4802.69.52	----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weighing more than 205 g/m2	5%	0
4802.69.53	----Goods, NSA, as follows: (a) weighing not more than 22 g/m2; (b) weighing more than 205 g/m2	5%	0
4802.69.59	----Other	5%	0
4802.69.90	---Other	5%	0
4803	TOILET OR FACIAL TISSUE STOCK, TOWEL OR NAPKIN STOCK AND SIMILAR PAPER OF A KIND USED FOR HOUSEHOLD OR SANITARY PURPOSES, CELLULOSE WADDING AND WEBS OF CELLULOSE FIBRES, WHETHER OR NOT CREPED, CRINKLED, EMBOSSED, PERFORATED, SURFACE-COLOURED, SURFACE-DECORATED OR PRINTED, IN ROLLS OR SHEETS:		
4803.00.10	---Embossed or perforated, weighing more than 22 g/m2	5%	0
4803.00.90	---Other	5%	0
4804	UNCOATED KRAFT PAPER AND PAPERBOARD, IN ROLLS OR SHEETS, OTHER THAN THAT OF 4802 OR 4803:		
4804.1	-Kraftliner:		
4804.11	--Unbleached:		
4804.11.10	---Weighing not more than 205 g/m2	5%	0
4804.11.90	---Other	5%	0
4804.19	--Other:		
4804.19.10	---Weighing not more than 205 g/m2	5%	0
4804.19.90	---Other	5%	0
4804.2	-Sack kraft paper:		
4804.21.00	--Unbleached	5%	0
4804.29.00	--Other	5%	0
4804.3	-Other kraft paper and paperboard weighing 150 g/m2 or less:		
4804.31.00	--Unbleached	5%	0
4804.39.00	--Other	5%	0
4804.4	-Other kraft paper and paperboard weighing more than 150 g/m2 but less than 225 g/m2:		
4804.41	--Unbleached:		
4804.41.10	---Weighing not more than 205 g/m2	5%	0
4804.41.90	---Other	5%	0
4804.42	--Bleached uniformly throughout the mass and of which more than 95%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wood fibres obtained by a chemical process:		
4804.42.10	---Weighing not more than 205 g/m2	5%	0
4804.42.90	---Other	5%	0
4804.49	--Other:		
4804.49.10	---Weighing not more than 205 g/m2	5%	0
4804.49.90	---Other	5%	0
4804.5	-Other kraft paper and paperboard weighing 225 g/m2 or more:		
4804.51.00	--Unbleached	5%	0
4804.52.00	--Bleached uniformly throughout the mass and of which more than 95%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wood fibres obtained by a chemical process	5%	0
4804.59.00	--Other	5%	0
4805	OTHER UNCOATED PAPER AND PAPERBOARD, IN ROLLS OR SHEETS, NOT FURTHER WORKED OR PROCESSED THAN AS SPECIFIED IN NOTE 3 TO THIS CHAPTER:		
4805.1	-Fluting paper:		
4805.11	--Semi-chemical fluting paper:		
4805.11.10	---Weighing not more than 205 g/m2	5%	0
4805.11.90	---Other	5%	0
4805.12	--Straw fluting paper:		
4805.12.10	---Weighing 130 g/m2 or more, but not more than 205 g/m2	5%	0
4805.12.90	---Weighing more than 205 g/m2	5%	0
4805.19	--Other:		
4805.19.10	---Of multi-ply paper or paperboard weighing not more than 205 g/m2	5%	0
4805.19.20	---Goods, as follows: (a) weighing not more than 22 g/m2; (b) weighing 205 g/m2 or more	5%	0
4805.19.90	---Other	5%	0
4805.2	-Testliner (recycled liner board):		
4805.24	--Weighing 150 g/m2 or less:		
4805.24.10	---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5%	0
4805.24.9	---Other:		
4805.24.91	----Weighing 22 g/m2 or less	5%	0
4805.24.99	----Other	5%	0
4805.25	--Weighing more than 150 g/m2: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4805.25.1	---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4805.25.11	----Weighing not more than 205 g/m2	5%	0
4805.25.19	----Other	5%	0
4805.25.9	---Other:		
4805.25.91	----Weighing not more than 205 g/m2	5%	0
4805.25.99	----Other	5%	0
4805.30.00	-Sulphite wrapping paper	5%	0
4805.40.00	-Filter paper and paperboard	5%	0
4805.50.00	-Felt paper and paperboard	0%	0
4805.9	-Other:		
4805.91	--Weighing 150 g/m2 or less:		
4805.91.10	---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5%	0
4805.91.9	---Other:		
4805.91.91	----Weighing not more than 22 g/m2	5%	0
4805.91.99	----Other	5%	0
4805.92	--Weighing more than 150 g/m2 but less than 225 g/m2:		
4805.92.1	---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4805.92.11	----Weighing more than 150 g/m2 but not more than 205 g/m2	5%	0
4805.92.19	----Other	5%	0
4805.92.9	---Other:		
4805.92.91	----Weighing more than 150 g/m2 but not more than 205 g/m2	5%	0
4805.92.92	----Goods, NSA, as follows: (a) carton boards and box boards (including strawboard); (b) container board (excluding kraft)	5%	0
4805.92.99	----Other	5%	0
4805.93	--Weighing 225 g/m2 or more:		
4805.93.10	---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5%	0
4805.93.9	---Other:		
4805.93.91	----Goods, as follows: (a) carton boards and box boards (including strawboard); (b) container board (excluding kraft)	5%	0
4805.93.99	----Other	5%	0
4806	VEGETABLE PARCHMENT, GREASEPROOF PAPERS, TRACING PAPERS AND GLASSINE AND OTHER GLAZED TRANSPARENT OR TRANSLUCENT PAPERS, IN ROLLS OR SHEETS:		
4806.10.00	-Vegetable parchment	0%	0
4806.20.00	-Greaseproof papers	0%	0
4806.30.00	-Tracing papers	0%	0
4806.40.00	-Glassine and other glazed transparent or translucent papers	0%	0
4807.00.00	COMPOSITE PAPER AND PAPERBOARD (MADE BY STICKING FLAT LAYERS OF PAPER OR PAPERBOARD TOGETHER WITH AN ADHESIVE), NOT SURFACE-COATED OR IMPREGNATED, WHETHER OR NOT INTERNALLY REINFORCED, IN ROLLS OR SHEETS	0%	0
4808	PAPER AND PAPERBOARD, CORRUGATED (WITH OR WITHOUT GLUED FLAT SURFACE SHEETS), CREPED, CRINKLED, EMBOSSED OR PERFORATED, IN ROLLS OR SHEETS, OTHER THAN PAPER OF THE KIND DESCRIBED IN 4803:		
4808.10	-Corrugated paper and paperboard, whether or not perforated:		
4808.10.10	---Embossed or perforated, weighing not more than 205 g/m2	5%	0
4808.10.90	---Other	0%	0
4808.40	-Kraft paper, creped or crinkled, whether or not embossed or perforated:		
4808.40.10	---Embossed or perforated, weighing not more than 205 g/m2	5%	0
4808.40.90	---Other	0%	0
4808.90	-Other:		
4808.90.10	---Embossed or perforated, weighing not more than 205 g/m2	5%	0
4808.90.90	---Other	0%	0
4809	CARBON PAPER, SELF-COPY PAPER AND OTHER COPYING OR TRANSFER PAPERS (INCLUDING COATED OR IMPREGNATED PAPER FOR DUPLICATOR STENCILS OR OFFSET PLATES), WHETHER OR NOT PRINTED, IN ROLLS OR SHEETS:		
4809.20.00	-Self-copy paper	5%	0
4809.90	-Other:		
4809.90.10	---Goods, as follows: (a) sublimation transfer printing paper having a width of not less than 0.9 m in rolls; (b) unsensitised prepared positive transfer media of the kind used for the photocopying of documents by the image-transfer process	0%	0
4809.90.90	---Other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4810	PAPER AND PAPERBOARD, COATED ON ONE OR BOTH SIDES WITH KAOLIN (CHINA CLAY) OR OTHER INORGANIC SUBSTANCES, WITH OR WITHOUT A BINDER, AND WITH NO OTHER COATING, WHETHER OR NOT SURFACE-COLOURED, SURFACE-DECORATED OR PRINTED, IN ROLLS OR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OF ANY SIZE:		
4810.1	-Paper and paperboard of a kind used for writing, printing or other graphic purposes, not containing fibres obtained by a mechanical or chemi-mechanical process, or of which not more than 10%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such fibres:		
4810.13	--In rolls:		
4810.13.10	---Cast coated paper and paperboard, not containing fibres obtained by mechanical process or of which not more than 10%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such fibres, in rolls of a width exceeding 15 cm	0%	0
4810.13.2	---Of a width not exceeding 15 cm:		
4810.13.21	----Printed for self-recording apparatus	5%	0
4810.13.29	----Other	5%	0
4810.13.90	---Other	5%	5
4810.14	--In sheets with one side not exceeding 435 mm and the other side not exceeding 297 mm, in the unfolded state:		
4810.14.10	---Cast coated paper and paperboard, not containing fibres obtained by mechanical process or of which not more than 10%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such fibres, in the form of: (a) strips of a width exceeding 15 cm; (b) in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with one side exceeding 36 cm and the other side exceeding 15 cm, in the unfolded state	0%	0
4810.14.2	---Goods, NSA, as follows: (a) in strips of a width not exceeding 15 cm; (b) in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in which no side exceeds 36 cm, in the unfolded state; (c) in rectangular sheets with one side exceeding 36 cm and the other side not exceeding 15 cm, in the unfolded state:		
4810.14.21	----Printed for self-recording apparatus	5%	0
4810.14.29	----Other	5%	0
4810.14.90	---Other	5%	0
4810.19	--Other:		
4810.19.10	---Cast coated paper and paperboard, not containing fibres obtained by mechanical process or of which not more than 10%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such fibres, in the form of: (a) strips of a width exceeding 15 cm; (b) in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with one side exceeding 36 cm and the other side exceeding 15 cm, in the unfolded state	0%	0
4810.19.2	---Goods, NSA, as follows: (a) in strips of a width not exceeding 15 cm; (b) in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in which no side exceeds 36 cm, in the unfolded state; (c) in rectangular sheets with one side exceeding 36 cm and the other side not exceeding 15 cm, in the unfolded state:		
4810.19.21	----Printed for self-recording apparatus	5%	0
4810.19.29	----Other	5%	0
4810.19.90	---Other	5%	5
4810.2	-Paper and paperboard of a kind used for writing, printing or other graphic purposes, of which more than 10%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fibres obtained by a mechanical or chemi-mechanical process:		
4810.22	--Light-weight coated paper:		
4810.22.20	---Goods, printed for self-recording apparatus, as follows: (a) in rolls or strips of a width not exceeding 15 cm; (b) in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in which no side exceeds 36 cm, in the unfolded state; (c) in rectangular sheets with one side exceeding 36 cm and the other side not exceeding 15 cm, in the unfolded state:	5%	0
4810.22.30	---Goods, NSA, as follows: (a) in rolls or strips of a width not exceeding 15 cm; (b) in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in which no side exceeds 36 cm, in the unfolded state; (c) in rectangular sheets with one side exceeding 36 cm and the other side not exceeding 15 cm, in the unfolded state:	5%	0
4810.22.90	---Other	5%	0
4810.29	--Other: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4810.29.10	---Cast coated paper and paperboard, not containing fibres obtained by mechanical process or of which not more than 10%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such fibres, as follows: (a) strips or rolls of a width exceeding 15 cm; (b) in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with one side exceeding 36 cm and the other side exceeding 15 cm, in the unfolded state	0%	0
4810.29.20	---Goods, NSA, printed for self-recording apparatus, as follows: (a) in rolls or strips of a width not exceeding 15 cm; (b) in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in which no side exceeds 36 cm, in the unfolded state; (c) in rectangular sheets with one side exceeding 36 cm and the other side not exceeding 15 cm, in the unfolded state:	5%	0
4810.29.30	---Goods, NSA, as follows: (a) in rolls or strips of a width not exceeding 15 cm; (b) in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in which no side exceeds 36 cm, in the unfolded state; (c) in rectangular sheets with one side exceeding 36 cm and the other side not exceeding 15 cm, in the unfolded state:	5%	0
4810.29.90	---Other	5%	5
4810.3	-Kraft paper and paperboard, other than that of a kind used for writing, printing or other graphic purposes:		
4810.31.00	--Bleached uniformly throughout the mass and of which more than 95%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wood fibres obtained by a chemical process, and weighing 150 g/m2 or less	5%	0
4810.32.00	--Bleached uniformly throughout the mass and of which more than 95%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wood fibres obtained by a chemical process, and weighing more than 150 g/m2	5%	0
4810.39.00	--Other	5%	0
4810.9	-Other paper and paperboard:		
4810.92.00	--Multi-ply	5%	0
4810.99.00	--Other	5%	5
4811	PAPER, PAPERBOARD, CELLULOSE WADDING AND WEBS OF CELLULOSE FIBRES, COATED, IMPREGNATED, COVERED, SURFACE-COLOURED, SURFACE-DECORATED OR PRINTED, IN ROLLS OR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OF ANY SIZE, OTHER THAN GOODS OF THE KIND DESCRIBED IN 4803, 4809 OR 4810:		
4811.10.00	-Tarred, bituminised or asphalted paper and paperboard	5%	0
4811.4	-Gummed or adhesive paper and paperboard:		
4811.41	--Self-adhesive:		
4811.41.10	---Goods, as follows: (a) in strips or rolls of a width not exceeding 15 cm; (b) in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in which no side exceeds 36 cm, in the unfolded state; (c) in rectangular sheets with one side exceeding 36 cm and the other side not exceeding 15 cm, in the unfolded state:	5%	0
4811.41.90	---Other	5%	0
4811.49	--Other:		
4811.49.10	---Goods, as follows: (a) in strips or rolls of a width not exceeding 15 cm; (b) in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in which no side exceeds 36 cm, in the unfolded state; (c) in rectangular sheets with one side exceeding 36 cm and the other side not exceeding 15 cm, in the unfolded state:	5%	0
4811.49.20	---Decalcomania paper, NSA	0%	0
4811.49.90	---Other	5%	0
4811.5	-Paper and paperboard coated, impregnated or covered with plastics (excluding adhesives):		
4811.51.00	--Bleached, weighing more than 150 g/m2	5%	0
4811.59	--Other:		
4811.59.10	---Goods, as follows: (a) in strips or rolls of a width not exceeding 15 cm; (b) in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in which no side exceeds 36 cm, in the unfolded state; (c) in rectangular sheets with one side exceeding 36 cm and the other side not exceeding 15 cm, in the unfolded state: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4811.59.20	---Floor coverings on a base of paper or of paperboard, whether or not cut to size	5%	0
4811.59.90	---Other	5%	0
4811.60.00	-Paper and paperboard, coated, impregnated or covered with wax, paraffin wax, stearin, oil or glycerol	5%	0
4811.90	-Other paper, paperboard, cellulose wadding and webs of cellulose fibres:		
4811.90.10	---Floor coverings on a base of paper or of paperboard, whether or not cut to size	5%	0
4811.90.20	---Indicator paper and paperboard, not being diagnostic reagent paper or paperboard, as follows: (a) in strips or rolls of a width not exceeding 15 cm; (b) in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in which no side exceeds 36 cm in the unfolded state; (c) in rectangular sheets with one side exceeding 36 cm and the other side not exceeding 15 cm, in the unfolded state	0%	0
4811.90.30	---Goods, NSA, as follows: (a) in strips or rolls of a width not exceeding 15 cm; (b) in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in which no side exceeds 36 cm, in the unfolded state; (c) in rectangular sheets with one side exceeding 36 cm and the other side not exceeding 15 cm, in the unfolded state:	5%	0
4811.90.40	---Goods, as follows, in strips or rolls of a width exceeding 15 cm or in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with one side exceeding 36 cm and the other side exceeding 15 cm, in the unfolded state: (a) cast coated paper and paperboard; (b) enamelled blotting paper and paperboard; (c) flock coated, marbled and leatherette paper; (d) indicator paper and paperboard, NSA; (e) parchment paper and paperboard, greaseproof paper and paperboard, and imitations thereof, and glazed transparent paper, but excluding coated paper and paperboard	0%	0
4811.90.90	---Other	5%	0
4812.00.00	FILTER BLOCKS, SLABS AND PLATES, OF PAPER PULP	0%	0
4813	CIGARETTE PAPER, WHETHER OR NOT CUT TO SIZE OR IN THE FORM OF BOOKLETS OR TUBES:		
4813.10.00	-In the form of booklets or tubes	0%	0
4813.20.00	-In rolls of a width not exceeding 5 cm	0%	0
4813.90.00	-Other	0%	0
4814	WALLPAPER AND SIMILAR WALL COVERINGS; WINDOW TRANSPARENCIES OF PAPER:		
4814.20.00	-Wallpaper and similar wall coverings, consisting of paper coated or covered, on the face side, with a grained, embossed, coloured, design-printed or otherwise decorated layer of plastics	5%	0
4814.90.00	-Other	5%	0
4816	CARBON PAPER, SELF-COPY PAPER AND OTHER COPYING OR TRANSFER PAPERS (OTHER THAN THOSE OF 4809), DUPLICATOR STENCILS AND OFFSET PLATES, OF PAPER, WHETHER OR NOT PUT UP IN BOXES:		
4816.20.00	-Self-copy paper	5%	0
4816.90	-Other:		
4816.90.10	---Unsensitised prepared positive transfer media of the type used for the photocopying of documents by the image-transfer process	0%	0
4816.90.90	---Other	5%	0
4817	ENVELOPES, LETTER CARDS, PLAIN POSTCARDS AND CORRESPONDENCE CARDS, OF PAPER OR PAPERBOARD; BOXES, POUCHES, WALLETS AND WRITING COMPENDIUMS, OF PAPER OR PAPERBOARD, CONTAINING AN ASSORTMENT OF PAPER STATIONERY:		
4817.10.00	-Envelopes	5%	0
4817.20.00	-Letter cards, plain postcards and correspondence cards	5%	0
4817.30.00	-Boxes, pouches, wallets and writing compendiums, of paper or paperboard, containing an assortment of paper stationery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4818	TOILET PAPER AND SIMILAR PAPER, CELLULOSE WADDING OR WEBS OF CELLULOSE FIBRES, OF A KIND USED FOR HOUSEHOLD OR SANITARY PURPOSES, IN ROLLS OF A WIDTH NOT EXCEEDING 36 cm, OR CUT TO SIZE OR SHAPE; HANDKERCHIEFS, CLEANSING TISSUES, TOWELS, TABLECLOTHS, SERVIETTES, BED SHEETS AND SIMILAR HOUSEHOLD, SANITARY OR HOSPITAL ARTICLES,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OF PAPER PULP, PAPER, CELLULOSE WADDING OR WEBS OF CELLULOSE FIBRES:		
4818.10.00	-Toilet paper	5%	0
4818.20.00	-Handkerchiefs, cleansing or facial tissues and towels	5%	0
4818.30.00	-Tablecloths and serviettes	5%	0
4818.50.00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5%	0
4818.90.00	-Other	5%	0
4819	CARTONS, BOXES, CASES, BAGS AND OTHER PACKING CONTAINERS, OF PAPER, PAPERBOARD, CELLULOSE WADDING OR WEBS OF CELLULOSE FIBRES; BOX FILES, LETTER TRAYS, AND SIMILAR ARTICLES, OF PAPER OR PAPERBOARD OF A KIND USED IN OFFICES, SHOPS OR THE LIKE:		
4819.10.00	-Cartons, boxes and cases, of corrugated paper or paperboard	5%	0
4819.20.00	-Folding cartons, boxes and cases, of non-corrugated paper or paperboard	5%	0
4819.30.00	-Sacks and bags, having a base of a width of 40 cm or more	5%	0
4819.40.00	-Other sacks and bags, including cones	5%	0
4819.50.00	-Other packing containers, including record sleeves	5%	0
4819.60.00	-Box files, letter trays, storage boxes and similar articles, of a kind used in offices, shops or the like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4820	REGISTERS, ACCOUNT BOOKS, NOTE BOOKS, ORDER BOOKS, RECEIPT BOOKS, LETTER PADS, MEMORANDUM PADS, DIARIES AND SIMILAR ARTICLES, EXERCISE BOOKS, BLOTTING-PADS, BINDERS (LOOSE-LEAF OR OTHER), FOLDERS, FILE COVERS, MANIFOLD BUSINESS FORMS, INTERLEAVED CARBON SETS AND OTHER ARTICLES OF STATIONERY, OF PAPER OR PAPERBOARD; ALBUMS FOR SAMPLES OR FOR COLLECTIONS AND BOOK COVERS, OF PAPER OR PAPERBOARD:		
4820.10.00	-Registers, account books, note books, order books, receipt books, letter pads, memorandum pads, diaries and similar articles	5%	0
4820.20	-Exercise books:		
4820.20.10	---Work books with printed texts and blank spaces to be filled in	0%	0
4820.20.90	---Other	5%	0
4820.30.00	-Binders (other than book covers), folders and file covers	5%	0
4820.40.00	-Manifold business forms and interleaved carbon sets	5%	0
4820.50.00	-Albums for samples or for collections	5%	0
4820.90.00	-Other	5%	0
4821	PAPER OR PAPERBOARD LABELS OF ALL KINDS, WHETHER OR NOT PRINTED:		
4821.10.00	-Printed	5%	0
4821.90.00	-Other	5%	0
4822	BOBBINS, SPOOLS, COPS AND SIMILAR SUPPORTS OF PAPER PULP, PAPER OR PAPERBOARD (WHETHER OR NOT PERFORATED OR HARDENED):		
4822.10.00	-Of a kind used for winding textile yarn	0%	0
4822.90.00	-Other	0%	0
4823	OTHER PAPER, PAPERBOARD, CELLULOSE WADDING AND WEBS OF CELLULOSE FIBRES, CUT TO SIZE OR SHAPE; OTHER ARTICLES OF PAPER PULP, PAPER, PAPERBOARD, CELLULOSE WADDING OR WEBS OF CELLULOSE FIBRES: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4823.20.00	-Filter paper and paperboard	5%	0
4823.40.00	-Rolls, sheets and dials, printed for self-recording apparatus	5%	0
4823.6	-Trays, dishes, plates, cups and the like, of paper or paperboard		
4823.61.00	--Of bamboo	5%	0
4823.69.00	--Other	5%	0
4823.70.00	-Moulded or pressed articles of paper pulp	5%	0
4823.90	-Other:		
4823.90.10	---Goods, as follows: (a) aseptic paper, not including goods and/or articles of aseptic paper; (b) filters wholly of filter paper; (c) monotype paper; (d) paper for use in wrapping fruit; (e) perforated cards for Jacquard and similar machines	0%	0
4823.90.20	---Other paper and paperboard, of a kind used for writing, printing or other graphic purposes	5%	0
4823.90.3	---Uncoated kraft paper and paperboard, in strips or rolls of a width exceeding 15 cm but not exceeding 36 cm, other than goods of 4823.90.20:		
4823.90.31	----Kraftliner, weighing not more than 205 g/m2	5%	0
4823.90.32	----Kraftliner, weighing more than 205 g/m2	5%	0
4823.90.33	----Sack kraft paper, unbleached	5%	0
4823.90.34	----Other sack kraft paper	5%	0
4823.90.35	----Kraft paper and paperboard, NSA, weighing not more than 205 g/m2	5%	0
4823.90.36	----Kraft paper and paperboard, NSA, weighing more than 205 g/m2 but less than 225 g/m2, as follows: (a) unbleached; (b) bleached uniformly throughout the mass and of which more than 95%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wood fibres obtained by a chemical process	5%	0
4823.90.37	----Kraft paper and paperboard, NSA, weighing more than 205 g/m2 but less than 225 g/m2	5%	0
4823.90.38	----Kraft paper and paperboard, NSA, weighing 225 g/m2 or more, bleached uniformly throughout the mass and of which more than 95%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wood fibres obtained by a chemical process	5%	0
4823.90.39	----Other	5%	0
4823.90.4	---Other uncoated paper and paperboard, not further worked or processed than as specified in Additional Note 6 to this Chapter, in strips or rolls of a width exceeding 15 cm but not exceeding 36 cm, other than goods of 4823.90.5:		
4823.90.41	----Semi-chemical fluting paper, weighing not more than 205 g/m2	5%	0
4823.90.42	----Semi-chemical fluting paper, weighing more than 205 g/m2	5%	0
4823.90.43	----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weighing not more than 205 g/m2	5%	0
4823.90.44	----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weighing more than 205 g/m2	5%	0
4823.90.45	----Sulphite wrapping paper	5%	0
4823.90.46	----Felt paper and paperboard	0%	0
4823.90.5	---Other uncoated paper or paperboard, not further worked or processed than as specified in Additional Note 6 to this chapter, in strips or rolls of a width exceeding 15 cm but not exceeding 36 cm, other than goods of 4823.90.4:		
4823.90.51	----Weighing not more than 22 g/m2	5%	0
4823.90.52	----Weighing more than 22 g/m2 but not more than 205 g/m2	5%	0
4823.90.53	----Weighing more than 205 g/m2 as follows: (a) carton boards and box boards (including strawboard); (b) container board (excluding kraft)	5%	0
4823.90.59	----Other	5%	0
4823.90.60	---Vegetable parchment, greaseproof papers, tracing papers and glassine and other glazed transparent or translucent papers, in strips or rolls of a width exceeding 15 cm but not exceeding 36 cm	0%	0
4823.90.70	---Composite paper and paperboard (made by sticking flat layer of paper or paperboard together with an adhesive), not surface-coated or impregnated, whether or not internally reinforced, in strips or rolls of a width exceeding 15 cm but not exceeding 36 cm	0%	0
4823.90.8	---Paper and paperboard, corrugated (with or without glued flat surface sheets), creped, crinkled, embossed or perforated, other than paper of the kind described in 4803, in strips or rolls of a width exceeding 15 cm but not exceeding 36 cm: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4823.90.81	----Paper and paperboard, whether or not embossed or perforated, weighing not more than 205 g/m2, as follows: (a) corrugated paper and paperboard; (b) kraft paper, creped or crinkled	5%	0
4823.90.82	----Other paper or paperboard, weighing not more than 205 g/m2, embossed or perforated	5%	0
4823.90.89	----Other	0%	0
4823.90.90	---Other	5%	0
49	PRINTED BOOKS, NEWSPAPERS, PICTURES AND OTHER PRODUCTS OF THE PRINTING INDUSTRY; MANUSCRIPTS, TYPESCRIPTS AND PLANS		
4901	PRINTED BOOKS, BROCHURES, LEAFLETS AND SIMILAR PRINTED MATTER, WHETHER OR NOT IN SINGLE SHEETS:		
4901.10.00	-In single sheets, whether or not folded	0%	0
4901.9	-Other:		
4901.91.00	--Dictionaries and encyclopaedias, and serial instalments thereof	0%	0
4901.99	--Other:		
4901.99.10	---Australian telephone directories and Australian timetables	5%	0
4901.99.90	---Other	0%	0
4902	NEWSPAPERS, JOURNALS AND PERIODICALS, WHETHER OR NOT ILLUSTRATED OR CONTAINING ADVERTISING MATERIAL:		
4902.10.00	-Appearing at least four times a week	0%	0
4902.90.00	-Other	0%	0
4903.00.00	CHILDREN'S PICTURE, DRAWING OR COLOURING BOOKS	0%	0
4904.00.00	MUSIC, PRINTED OR IN MANUSCRIPT, WHETHER OR NOT BOUND OR ILLUSTRATED	0%	0
4905	MAPS AND HYDROGRAPHIC OR SIMILAR CHARTS OF ALL KINDS, INCLUDING ATLASES, WALL MAPS, TOPOGRAPHICAL PLANS AND GLOBES, PRINTED:		
4905.10.00	-Globes	0%	0
4905.9	-Other:		
4905.91.00	--In book form	0%	0
4905.99.00	--Other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4906.00.00	PLANS AND DRAWINGS FOR ARCHITECTURAL, ENGINEERING, INDUSTRIAL, COMMERCIAL, TOPOGRAPHICAL OR SIMILAR PURPOSES, BEING ORIGINALS DRAWN BY HAND; HAND-WRITTEN TEXTS; PHOTOGRAPHIC REPRODUCTIONS ON SENSITISED PAPER AND CARBON COPIES OF THE FOREGOING	0%	0
4907	UNUSED POSTAGE, REVENUE OR SIMILAR STAMPS OF CURRENT OR NEW ISSUE IN THE COUNTRY IN WHICH THEY HAVE, OR WILL HAVE, A RECOGNISED FACE VALUE; STAMP-IMPRESSED PAPER; BANKNOTES; CHEQUE FORMS; STOCK, SHARE OR BOND CERTIFICATES AND SIMILAR DOCUMENTS OF TITLE:		
4907.00.10	---Stamps and banknotes	0%	0
4907.00.90	---Other	5%	0
4908	TRANSFERS (DECALCOMANIAS):		
4908.10.00	-Transfers (decalcomanias), vitrifiable	5%	0
4908.90.00	-Other	5%	0
4909.00.00	PRINTED OR ILLUSTRATED POSTCARDS; PRINTED CARDS BEARING PERSONAL GREETINGS, MESSAGES OR ANNOUNCEMENTS, WHETHER OR NOT ILLUSTRATED, WITH OR WITHOUT ENVELOPES OR TRIMMINGS	5%	0
4910.00.00	CALENDARS OF ANY KIND, PRINTED, INCLUDING CALENDAR BLOCKS	5%	0
4911	OTHER PRINTED MATTER, INCLUDING PRINTED PICTURES AND PHOTOGRAPHS:		
4911.10	-Trade advertising material, commercial catalogues and the like:		
4911.10.10	---Catalogues of visual or auditory material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character	0%	0
4911.10.90	---Other	5%	0
4911.9	-Other:		
4911.91.00	--Pictures, designs and photographs	5%	0
4911.99.00	--Other	5%	0
50	SILK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5001.00.00	SILK-WORM COCOONS SUITABLE FOR REELING	0%	0
5002.00.00	RAW SILK (NOT THROWN)	0%	0
5003.00.00	SILK WASTE (INCLUDING COCOONS UNSUITABLE FOR REEL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0%	0
5004.00.00	SILK YARN (OTHER THAN YARN SPUN FROM SILK WASTE) NOT PUT UP FOR RETAIL SALE	0%	0
5005.00.00	YARN SPUN FROM SILK WASTE, NOT PUT UP FOR RETAIL SALE	0%	0
5006.00.00	SILK YARN AND YARN SPUN FROM SILK WASTE, PUT UP FOR RETAIL SALE; SILK-WORM GUT	0%	0
5007	WOVEN FABRICS OF SILK OR OF SILK WASTE:		
5007.10	-Fabrics of noil silk:		
5007.10.10	---Containing 20% or more by weight of man-made fibres not printed	5%	0
5007.10.90	---Other	0%	0
5007.20.00	-Other fabrics,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silk or of silk waste other than noil silk	0%	0
5007.90	-Other fabrics:		
5007.90.10	---Containing 20% or more by weight of man-made fibres	5%	0
5007.90.90	---Other	0%	0
51	WOOL, FINE OR COARSE ANIMAL HAIR; HORSEHAIR YARN AND WOVEN FABRIC		
5101	WOOL, NOT CARDED OR COMBED:		
5101.1	-Greasy, including fleece-washed wool:		
5101.11.00	--Shorn wool	0%	0
5101.19.00	--Other	0%	0
5101.2	-Degreased, not carbonised:		
5101.21.00	--Shorn wool	0%	0
5101.29.00	--Other	0%	0
5101.30.00	-Carbonised	0%	0
5102	FINE OR COARSE ANIMAL HAIR, NOT CARDED OR COMBED:		
5102.1	-Fine animal hair:		
5102.11.00	--Of Kashmir (cashmere) goats	0%	0
5102.19.00	--Other	0%	0
5102.20.00	-Coarse animal hair	0%	0
5103	WASTE OF WOOL OR OF FINE OR COARSE ANIMAL HAIR, INCLUDING YARN WASTE BUT EXCLUDING GARNETTED STOCK:		
5103.10.00	-Noils of wool or of fine animal hair	0%	0
5103.20.00	-Other waste of wool or of fine animal hair	0%	0
5103.30.00	-Waste of coarse animal hair	0%	0
5104.00.00	GARNETTED STOCK OF WOOL OR OF FINE OR COARSE ANIMAL HAIR	0%	0
5105	WOOL AND FINE OR COARSE ANIMAL HAIR, CARDED OR COMBED (INCLUDING COMBED WOOL IN FRAGMENTS):		
5105.10.00	-Carded wool	0%	0
5105.2	-Wool tops and other combed wool:		
5105.21.00	--Combed wool in fragments	0%	0
5105.29.00	--Other	0%	0
5105.3	-Fine animal hair, carded or combed:		
5105.31.00	--Of Kashmir (cashmere) goats	0%	0
5105.39.00	--Other	0%	0
5105.40.00	-Coarse animal hair, carded or combed	0%	0
5106	YARN OF CARDED WOOL, NOT PUT UP FOR RETAIL SALE:		
5106.10.00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wool	5%	0
5106.20.00	-Containing less than 85% by weight of wool	5%	0
5107	YARN OF COMBED WOOL, NOT PUT UP FOR RETAIL SALE:		
5107.10.00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wool	5%	0
5107.20.00	-Containing less than 85% by weight of wool	5%	0
5108	YARN OF FINE ANIMAL HAIR (CARDED OR COMBED), NOT PUT UP FOR RETAIL SALE:		
5108.10.00	-Carded	5%	0
5108.20.00	-Combed	5%	0
5109	YARN OF WOOL OR OF FINE ANIMAL HAIR, PUT UP FOR RETAIL SALE:		
5109.10.00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wool or of fine animal hair	5%	0
5109.90.00	-Other	5%	0
5110.00.00	YARN OF COARSE ANIMAL HAIR OR OF HORSEHAIR (INCLUDING GIMPED HORSEHAIR YARN), WHETHER OR NOT PUT UP FOR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RETAIL SALE		
5111	WOVEN FABRICS OF CARDED WOOL OR OF CARDED FINE ANIMAL HAIR:		
5111.1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wool or of fine animal hair:		
5111.11.00	--Of a weight not exceeding 300 g/m2	5%	0
5111.19.00	--Other	5%	0
5111.20.00	-Other, mixed mainly or solely with man-made filaments	5%	0
5111.30.00	-Other, mixed mainly or solely with man-made staple fibres	5%	0
5111.90.00	-Other	5%	0
5112	WOVEN FABRICS OF COMBED WOOL OR OF COMBED FINE ANIMAL HAIR:		
5112.1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wool or of fine animal hair:		
5112.11.00	--Of a weight not exceeding 200 g/m2	5%	0
5112.19.00	--Other	5%	0
5112.20.00	-Other, mixed mainly or solely with man-made filaments	5%	0
5112.30.00	-Other, mixed mainly or solely with man-made staple fibres	5%	0
5112.90.00	-Other	5%	0
5113.00.00	WOVEN FABRICS OF COARSE ANIMAL HAIR OR OF HORSEHAIR	5%	0
52	COTTON		
5201.00.00	COTTON, NOT CARDED OR COMBED	0%	0
5202	COTTON WASTE (INCLUD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5202.10.00	-Yarn waste (including thread waste)	0%	0
5202.9	-Other:		
5202.91.00	--Garnetted stock	0%	0
5202.99.00	--Other	0%	0
5203.00.00	COTTON, CARDED OR COMBED	0%	0
5204	COTTON SEWING THREAD, WHETHER OR NOT PUT UP FOR RETAIL SALE:		
5204.1	-Not put up for retail sale:		
5204.11.00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cotton	5%	0
5204.19.00	--Other	5%	0
5204.20.00	-Put up for retail sale	5%	0
5205	COTTON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COTTON, NOT PUT UP FOR RETAIL SALE:		
5205.1	-Single yarn, of uncombed fibres:		
5205.11	--Measuring 714.29 decitex or more (not exceeding 14 metric number):		
5205.11.10	---Measuring 20 000 decitex or more	5%	0
5205.11.90	---Other	5%	0
5205.12.00	--Measuring less than 714.29 decitex but not less than 232.56 decitex (exceeding 14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43 metric number)	5%	0
5205.13.00	--Measuring less than 232.56 decitex but not less than 192.31 decitex (exceeding 43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52 metric number)	5%	0
5205.14.00	--Measuring less than 192.31 decitex but not less than 125 decitex (exceeding 52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80 metric number)	5%	0
5205.15.00	--Measuring less than 125 decitex (exceeding 80 metric number)	5%	0
5205.2	-Single yarn, of combed fibres:		
5205.21	--Measuring 714.29 decitex or more (not exceeding 14 metric number):		
5205.21.10	---Measuring 20 000 decitex or more	5%	0
5205.21.90	---Other	5%	0
5205.22.00	--Measuring less than 714.29 decitex but not less than 232.56 decitex (exceeding 14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43 metric number)	5%	0
5205.23.00	--Measuring less than 232.56 decitex but not less than 192.31 decitex (exceeding 43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52 metric number)	5%	0
5205.24.00	--Measuring less than 192.31 decitex but not less than 125 decitex (exceeding 52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80 metric number)	5%	0
5205.26.00	--Measuring less than 125 decitex but not less than 106.38 decitex (exceeding 80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94 metric number)	5%	0
5205.27.00	--Measuring less than 106.38 decitex but not less than 83.33 decitex (exceeding 94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120 metric number)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5205.28.00	--Measuring less than 83.33 decitex (exceeding 120 metric number)	5%	0
5205.3	-Multiple (folded) or cabled yarn, of uncombed fibres:		
5205.31	--Measuring per single yarn 714.29 decitex or more (not exceeding 14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5205.31.10	---Measuring per single yarn 20 000 decitex or more	5%	0
5205.31.90	---Other	5%	0
5205.32.00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714.29 decitex but not less than 232.56 decitex (exceeding 14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43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5%	0
5205.33.00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232.56 decitex but not less than 192.31 decitex (exceeding 43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52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5%	0
5205.34.00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192.31 decitex but not less than 125 decitex (exceeding 52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80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5%	0
5205.35.00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125 decitex (exceeding 80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5%	0
5205.4	-Multiple (folded) or cabled yarn, of combed fibres:		
5205.41	--Measuring per single yarn 714.29 decitex or more (not exceeding 14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5205.41.10	---Measuring per single yarn 20 000 decitex or more	5%	0
5205.41.90	---Other	5%	0
5205.42.00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714.29 decitex but not less than 232.56 decitex (exceeding 14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43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5%	0
5205.43.00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232.56 decitex but not less than 192.31 decitex (exceeding 43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52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5%	0
5205.44.00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192.31 decitex but not less than 125 decitex (exceeding 52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80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5%	0
5205.46.00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125 decitex but not less than 106.38 decitex (exceeding 80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94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5%	0
5205.47.00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106.38 decitex but not less than 83.33 decitex (exceeding 94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120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5%	0
5205.48.00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83.33 decitex (exceeding 120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5%	0
5206	COTTON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 CONTAINING LESS THAN 85% BY WEIGHT OF COTTON, NOT PUT UP FOR RETAIL SALE:		
5206.1	-Single yarn, of uncombed fibres:		
5206.11	--Measuring 714.29 decitex or more (not exceeding 14 metric number):		
5206.11.10	---Measuring 20 000 decitex or more	5%	0
5206.11.90	---Other	5%	0
5206.12.00	--Measuring less than 714.29 decitex but not less than 232.56 decitex (exceeding 14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43 metric number)	5%	0
5206.13.00	--Measuring less than 232.56 decitex but not less than 192.31 decitex (exceeding 43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52 metric number)	5%	0
5206.14.00	--Measuring less than 192.31 decitex but not less than 125 decitex (exceeding 52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80 metric number)	5%	0
5206.15.00	--Measuring less than 125 decitex (exceeding 80 metric number)	5%	0
5206.2	-Single yarn, of combed fibres:		
5206.21	--Measuring 714.29 decitex or more (not exceeding 14 metric number):		
5206.21.10	---Measuring 20 000 decitex or more	5%	0
5206.21.90	---Other	5%	0
5206.22.00	--Measuring less than 714.29 decitex but not less than 232.56 decitex (exceeding 14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43 metric number)	5%	0
5206.23.00	--Measuring less than 232.56 decitex but not less than 192.31 decitex (exceeding 43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52 metric number)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5206.24.00	--Measuring less than 192.31 decitex but not less than 125 decitex (exceeding 52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80 metric number)	5%	0
5206.25.00	--Measuring less than 125 decitex (exceeding 80 metric number)	5%	0
5206.3	-Multiple (folded) or cabled yarn, of uncombed fibres:		
5206.31	--Measuring per single yarn 714.29 decitex or more (not exceeding 14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5206.31.10	---Measuring per single yarn 20 000 decitex or more	5%	0
5206.31.90	---Other	5%	0
5206.32.00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714.29 decitex but not less than 232.56 decitex (exceeding 14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43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5%	0
5206.33.00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232.56 decitex but not less than 192.31 decitex (exceeding 43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52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5%	0
5206.34.00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192.31 decitex but not less than 125 decitex (exceeding 52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80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5%	0
5206.35.00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125 decitex (exceeding 80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5%	0
5206.4	-Multiple (folded) or cabled yarn, of combed fibres:		
5206.41	--Measuring per single yarn 714.29 decitex or more (not exceeding 14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5206.41.10	---Measuring per single yarn 20 000 decitex or more	5%	0
5206.41.90	---Other	5%	0
5206.42.00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714.29 decitex but not less than 232.56 decitex (exceeding 14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43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5%	0
5206.43.00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232.56 decitex but not less than 192.31 decitex (exceeding 43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52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5%	0
5206.44.00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192.31 decitex but not less than 125 decitex (exceeding 52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80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5%	0
5206.45.00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125 decitex (exceeding 80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5%	0
5207	COTTON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 PUT UP FOR RETAIL SALE:		
5207.10.00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cotton	5%	0
5207.90.00	-Other	5%	0
5208	WOVEN FABRICS OF COTTON,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COTTON, WEIGHING NOT MORE THAN 200 G/M2:		
5208.1	-Unbleached:		
5208.11.00	--Plain weave, weighing not more than 100 g/m2	5%	0
5208.12.00	--Plain weave, weighing more than 100 g/m2	5%	0
5208.13.00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5%	0
5208.19.00	--Other fabrics	5%	0
5208.2	-Bleached:		
5208.21.00	--Plain weave, weighing not more than 100 g/m2	5%	0
5208.22.00	--Plain weave, weighing more than 100 g/m2	5%	0
5208.23.00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5%	0
5208.29.00	--Other fabrics	5%	0
5208.3	-Dyed:		
5208.31.00	--Plain weave, weighing not more than 100 g/m2	5%	0
5208.32.00	--Plain weave, weighing more than 100 g/m2	5%	0
5208.33.00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5%	0
5208.39.00	--Other fabrics	5%	0
5208.4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5208.41.00	--Plain weave, weighing not more than 100 g/m2	5%	0
5208.42.00	--Plain weave, weighing more than 100 g/m2	5%	0
5208.43.00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5%	0
5208.49.00	--Other fabrics	5%	0
5208.5	-Printed: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5208.51.00	--Plain weave, weighing not more than 100 g/m2	5%	0
5208.52.00	--Plain weave, weighing more than 100 g/m2	5%	0
5208.59.00	--Other fabrics	5%	0
5209	WOVEN FABRICS OF COTTON,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COTTON, WEIGHING MORE THAN 200 g/m2:		
5209.1	-Unbleached:		
5209.11.00	--Plain weave	5%	0
5209.12.00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5%	0
5209.19.00	--Other fabrics	5%	0
5209.2	-Bleached:		
5209.21.00	--Plain weave	5%	0
5209.22.00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5%	0
5209.29.00	--Other fabrics	5%	0
5209.3	-Dyed:		
5209.31.00	--Plain weave	5%	0
5209.32.00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5%	0
5209.39.00	--Other fabrics	5%	0
5209.4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5209.41.00	--Plain weave	5%	0
5209.42.00	--Denim	5%	0
5209.43.00	--Other fabrics of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5%	0
5209.49.00	--Other fabrics	5%	0
5209.5	-Printed:		
5209.51.00	--Plain weave	5%	0
5209.52.00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5%	0
5209.59.00	--Other fabrics	5%	0
5210	WOVEN FABRICS OF COTTON, CONTAINING LESS THAN 85% BY WEIGHT OF COTTON, MIXED MAINLY OR SOLELY WITH MAN-MADE FIBRES, WEIGHING NOT MORE THAN 200 g/m2:		
5210.1	-Unbleached:		
5210.11.00	--Plain weave	5%	0
5210.19.00	--Other fabrics	5%	0
5210.2	-Bleached:		
5210.21.00	--Plain weave	5%	0
5210.29.00	--Other fabrics	5%	0
5210.3	-Dyed:		
5210.31.00	--Plain weave	5%	0
5210.32.00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5%	0
5210.39.00	--Other fabrics	5%	0
5210.4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5210.41.00	--Plain weave	5%	0
5210.49.00	--Other fabrics	5%	0
5210.5	-Printed:		
5210.51.00	--Plain weave	5%	0
5210.59.00	--Other fabrics	5%	0
5211	WOVEN FABRICS OF COTTON, CONTAINING LESS THAN 85% BY WEIGHT OF COTTON, MIXED MAINLY OR SOLELY WITH MAN-MADE FIBRES, WEIGHING MORE THAN 200 g/m2:		
5211.1	-Unbleached:		
5211.11.00	--Plain weave	5%	0
5211.12.00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5%	0
5211.19.00	--Other fabrics	5%	0
5211.20.00	-Bleached	5%	0
5211.3	-Dyed:		
5211.31.00	--Plain weave	5%	0
5211.32.00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5%	0
5211.39.00	--Other fabrics	5%	0
5211.4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5211.41.00	--Plain weave	5%	0
5211.42.00	--Denim	5%	0
5211.43.00	--Other fabrics of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5%	0
5211.49.00	--Other fabrics	5%	0
5211.5	-Printed:		
5211.51.00	--Plain weave	5%	0
5211.52.00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5%	0
5211.59.00	--Other fabrics	5%	0
5212	OTHER WOVEN FABRICS OF COTTON:		
5212.1	-Weighing not more than 200 g/m2:		
5212.11.00	--Unbleached	5%	0
5212.12.00	--Bleached	5%	0
5212.13.00	--Dyed	5%	0
5212.14.0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5%	0
5212.15.00	--Printed	5%	0
5212.2	-Weighing more than 200 g/m2:		
5212.21.00	--Unbleached	5%	0
5212.22.00	--Bleached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5212.23.00	--Dyed	5%	0
5212.24.0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5%	0
5212.25.00	--Printed	5%	0
53	OTHER VEGETABLE TEXTILE FIBRES; PAPER YARN AND WOVEN FABRICS OF PAPER YARN		
5301	FLAX, RAW OR PROCESSED BUT NOT SPUN; FLAX TOW AND WASTE (INCLUD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5301.10.00	-Flax, raw or retted	0%	0
5301.2	-Flax, broken, scutched, hackled or otherwise processed, but not spun:		
5301.21.00	--Broken or scutched	0%	0
5301.29.00	--Other	0%	0
5301.30.00	-Flax tow and waste	0%	0
5302	TRUE HEMP (CANNABIS SATIVA L.), RAW OR PROCESSED BUT NOT SPUN; TOW AND WASTE OF TRUE HEMP (INCLUD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5302.10.00	-True hemp, raw or retted	0%	0
5302.90.00	-Other	0%	0
5303	JUTE AND OTHER TEXTILE BAST FIBRES (EXCLUDING FLAX, TRUE HEMP AND RAMIE), RAW OR PROCESSED BUT NOT SPUN; TOW AND WASTE OF THESE FIBRES (INCLUD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5303.10.00	-Jute and other textile bast fibres, raw or retted	0%	0
5303.90.00	-Other	0%	0
5305.00.00	COCONUT, ABACA (MANILA HEMP OR Musa textilis Nee), RAMIE AND OTHER VEGETABLE TEXTILE FIBR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RAW OR PROCESSED BUT NOT SPUN; TOW, NOILS AND WASTE OF THESE FIBRES (INCLUD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0%	0
5306	FLAX YARN:		
5306.10.00	-Single	0%	0
5306.20.00	-Multiple (folded) or cabled	5%	0
5307	YARN OF JUTE OR OF OTHER TEXTILE BAST FIBRES OF 5303:		
5307.10.00	-Single	5%	0
5307.20.00	-Multiple (folded) or cabled	5%	0
5308	YARN OF OTHER VEGETABLE TEXTILE FIBRES; PAPER YARN:		
5308.10.00	-Coir yarn	0%	0
5308.20.00	-True hemp yarn	0%	0
5308.90.00	-Other	0%	0
5309	WOVEN FABRICS OF FLAX:		
5309.1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flax:		
5309.11.00	--Unbleached or bleached	0%	0
5309.19.00	--Other	0%	0
5309.2	-Containing less than 85% by weight of flax:		
5309.21.00	--Unbleached or bleached	0%	0
5309.29.00	--Other	0%	0
5310	WOVEN FABRICS OF JUTE OR OF OTHER TEXTILE BAST FIBRES OF 5303:		
5310.10.00	-Unbleached	0%	0
5310.90.00	-Other	0%	0
5311.00.00	WOVEN FABRICS OF OTHER VEGETABLE TEXTILE FIBRES; WOVEN FABRICS OF PAPER YARN	0%	0
54	MAN-MADE FILAMENTS; STRIP AND THE LIKE OF MAN-MADE TEXTILE MATERIALS		
5401	SEWING THREAD OF MAN-MADE FILAMENTS, WHETHER OR NOT PUT UP FOR RETAIL SALE:		
5401.10.00	-Of synthetic filaments	5%	0
5401.20.00	-Of artificial filaments	5%	0
5402	SYNTHETIC FILAMENT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 NOT PUT UP FOR RETAIL SALE, INCLUDING SYNTHETIC MONOFILAMENT OF LESS THAN 67 DECITEX:		
5402.1	-High tenacity yarn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5402.11.00	--Of aramids	0%	0
5402.19.00	--Other	0%	0
5402.20.00	-High tenacity yarn of polyesters	0%	0
5402.3	-Textured yarn:		
5402.31.0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measuring per single yarn not more than 50 tex	5%	0
5402.32.0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measuring per single yarn more than 50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tex		
5402.33.00	--Of polyesters	5%	0
5402.34.00	--Of polypropylene	5%	0
5402.39.00	--Other	5%	0
5402.4	-Other yarn, single, untwisted or with a twist not exceeding 50 turns per metre:		
5402.44.00	--Elastomeric	5%	0
5402.45.00	--Other,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5%	0
5402.46.00	--Other, of polyesters, partially oriented	5%	0
5402.47.00	--Other, of polyesters	5%	0
5402.48.00	--Other, of polypropylene	5%	0
5402.49.00	--Other	5%	0
5402.5	-Other yarn, single, with a twist exceeding 50 turns per metre:		
5402.51.0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5%	0
5402.52.00	--Of polyesters	5%	0
5402.59.00	--Other	5%	0
5402.6	-Other yarn, multiple (folded) or cabled:		
5402.61.0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5%	0
5402.62.00	--Of polyesters	5%	0
5402.69.00	--Other	5%	0
5403	ARTIFICIAL FILAMENT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 NOT PUT UP FOR RETAIL SALE, INCLUDING ARTIFICIAL MONOFILAMENT OF LESS THAN 67 DECITEX:		
5403.10.00	-High tenacity yarn of viscose rayon	0%	0
5403.3	-Other yarn, single:		
5403.31.00	--Of viscose rayon, untwisted or with a twist not exceeding 120 turns per metre	5%	0
5403.32.00	--Of viscose rayon, with a twist exceeding 120 turns per metre	5%	0
5403.33.00	--Of cellulose acetate	5%	0
5403.39.00	--Other	5%	0
5403.4	-Other yarn, multiple (folded) or cabled:		
5403.41.00	--Of viscose rayon	5%	0
5403.42.00	--Of cellulose acetate	5%	0
5403.49.00	--Other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5404	SYNTHETIC MONOFILAMENT OF 67 DECITEX OR MORE AND OF WHICH NO CROSS-SECTIONAL DIMENSION EXCEEDS 1 MM; STRIP AND THE LIKE (FOR EXAMPLE, ARTIFICIAL STRAW) OF SYNTHETIC TEXTILE MATERIALS OF AN APPARENT WIDTH NOT EXCEEDING 5 MM:		
5404.1	-Monofilament:		
5404.11.00	--Elastomeric	5%	0
5404.12.00	--Other, of polypropylene	5%	0
5404.19.00	--Other	5%	0
5404.90.00	-Other	5%	0
5405.00.00	ARTIFICIAL MONOFILAMENT OF 67 DECITEX OR MORE AND OF WHICH NO CROSS-SECTIONAL DIMENSION EXCEEDS 1 mm; STRIP AND THE LIKE (FOR EXAMPLE, ARTIFICIAL STRAW) OF ARTIFICIAL TEXTILE MATERIALS OF AN APPARENT WIDTH NOT EXCEEDING 5 mm	5%	0
5406.00.00	MAN-MADE FILAMENT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 PUT UP FOR RETAIL SALE	5%	0
5407	WOVEN FABRICS OF SYNTHETIC FILAMENT YARN, INCLUDING WOVEN FABRICS OBTAINED FROM MATERIALS OF5404:		
5407.10.00	-Woven fabrics obtained from high tenacity yarn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or of polyesters	5%	0
5407.20.00	-Woven fabrics obtained from strip or the like	5%	0
5407.30.00	-Fabrics specified in Note 9 to Section XI	5%	0
5407.4	-Other woven fabrics,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filaments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5407.41.00	--Unbleached or bleached	5%	0
5407.42.00	--Dyed	5%	0
5407.43.0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5%	0
5407.44.00	--Printed	5%	0
5407.5	-Other woven fabrics,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textured polyester filaments:		
5407.51.00	--Unbleached or bleached	5%	0
5407.52.00	--Dyed	5%	0
5407.53.0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5%	0
5407.54.00	--Printed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5407.6	-Other woven fabrics,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polyester filaments:		
5407.61.00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non-textured polyester filaments	5%	0
5407.69.00	--Other	5%	0
5407.7	-Other woven fabrics,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synthetic filaments:		
5407.71.00	--Unbleached or bleached	5%	0
5407.72.00	--Dyed	5%	0
5407.73.0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5%	0
5407.74.00	--Printed	5%	0
5407.8	-Other woven fabrics, containing less than 85% by weight of synthetic filaments, mixed mainly or solely with cotton:		
5407.81.00	--Unbleached or bleached	5%	0
5407.82.00	--Dyed	5%	0
5407.83.0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5%	0
5407.84.00	--Printed	5%	0
5407.9	-Other woven fabrics:		
5407.91.00	--Unbleached or bleached	5%	0
5407.92.00	--Dyed	5%	0
5407.93.0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5%	0
5407.94.00	--Printed	5%	0
5408	WOVEN FABRICS OF ARTIFICIAL FILAMENT YARN, INCLUDING WOVEN FABRICS OBTAINED FROM MATERIALS OF 5405.00.00:		
5408.10.00	-Woven fabrics obtained from high tenacity yarn of viscose rayon	5%	0
5408.2	-Other woven fabrics,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artificial filament or strip or the like:		
5408.21.00	--Unbleached or bleached	5%	0
5408.22.00	--Dyed	5%	0
5408.23.0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5%	0
5408.24.00	--Printed	5%	0
5408.3	-Other woven fabrics:		
5408.31.00	--Unbleached or bleached	5%	0
5408.32.00	--Dyed	5%	0
5408.33.0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5%	0
5408.34.00	--Printed	5%	0
55	MAN-MADE STAPLE FIBRES		
5501	SYNTHETIC FILAMENT TOW:		
5501.1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5501.10.10	---Goods, as follows: (a) coated or covered with plastics; (b) encased within a sheath of braided or plaited natural or synthetic fibres	5%	0
5501.10.90	---Other	0%	0
5501.20	-Of polyesters:		
5501.20.10	---Goods, as follows: (a) coated or covered with plastics; (b) encased within a sheath of braided or plaited natural or synthetic fibres	5%	0
5501.20.90	---Other	0%	0
5501.30	-Acrylic or modacrylic:		
5501.30.10	---Goods, as follows: (a) coated or covered with plastics; (b) encased within a sheath of braided or plaited natural or synthetic fibres	5%	0
5501.30.90	---Other	0%	0
5501.40	-Of polypropylene:		
5501.40.10	---Goods, as follows: (a) coated or covered with plastics; (b) encased within a sheath of braided or plaited natural or synthetic fibres	5%	0
5501.40.90	---Other	0%	0
5501.90	-Other:		
5501.90.10	---Goods, as follows: (a) coated or covered with plastics; (b) encased within a sheath of braided or plaited natural or synthetic fibres	5%	0
5501.90.90	---Other	0%	0
5502.00.00	ARTIFICIAL FILAMENT TOW	0%	0
5503	SYNTHETIC STAPLE FIBRES, NOT CARDED, COMBED OR OTHERWISE PROCESSED FOR SPINNING:		
5503.1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5503.11.00	--Of aramids	0%	0
5503.19.00	--Other	0%	0
5503.20.00	-Of polyesters	0%	0
5503.30.00	-Acrylic or modacrylic	0%	0
5503.40.00	-Of polypropylene	0%	0
5503.90.00	-Other	0%	0
5504	ARTIFICIAL STAPLE FIBRES, NOT CARDED, COMBED OR OTHERWISE PROCESSED FOR SPINNING:		
5504.10.00	-Of viscose rayon	0%	0
5504.90.00	-Other	0%	0
5505	WASTE (INCLUDING NOILS,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OF MAN-MADE FIBRES: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5505.10.00	-Of synthetic fibres	0%	0
5505.20.00	-Of artificial fibres	0%	0
5506	SYNTHETIC STAPLE FIBRES, CARDED, COMBED OR OTHERWISE PROCESSED FOR SPINNING:		
5506.10.0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0%	0
5506.20.00	-Of polyesters	0%	0
5506.30.00	-Acrylic or modacrylic	0%	0
5506.90.00	-Other	0%	0
5507.00.00	ARTIFICIAL STAPLE FIBRES, CARDED, COMBED OR OTHERWISE PROCESSED FOR SPINNING	0%	0
5508	SEWING THREAD OF MAN-MADE STAPLE FIBRES, WHETHER OR NOT PUT UP FOR RETAIL SALE:		
5508.10.00	-Of synthetic staple fibres	5%	0
5508.20.00	-Of artificial staple fibres	5%	0
5509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 OF SYNTHETIC STAPLE FIBRES, NOT PUT UP FOR RETAIL SALE:		
5509.1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staple fibres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5509.11.00	--Single yarn	5%	0
5509.12.00	--Multiple (folded) or cabled yarn	5%	0
5509.2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polyester staple fibres:		
5509.21.00	--Single yarn	5%	0
5509.22.00	--Multiple (folded) or cabled yarn	5%	0
5509.3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acrylic or modacrylic staple fibres:		
5509.31.00	--Single yarn	5%	0
5509.32.00	--Multiple (folded) or cabled yarn	5%	0
5509.4	-Other yarn,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synthetic staple fibres:		
5509.41.00	--Single yarn	5%	0
5509.42.00	--Multiple (folded) or cabled yarn	5%	0
5509.5	-Other yarn, of polyester staple fibres:		
5509.51.00	--Mixed mainly or solely with artificial staple fibres	5%	0
5509.52.00	--Mixed mainly or solely with wool or fine animal hair	5%	0
5509.53.00	--Mixed mainly or solely with cotton	5%	0
5509.59.00	--Other	5%	0
5509.6	-Other yarn, of acrylic or modacrylic staple fibres:		
5509.61.00	--Mixed mainly or solely with wool or fine animal hair	5%	0
5509.62.00	--Mixed mainly or solely with cotton	5%	0
5509.69.00	--Other	5%	0
5509.9	-Other yarn:		
5509.91.00	--Mixed mainly or solely with wool or fine animal hair	5%	0
5509.92.00	--Mixed mainly or solely with cotton	5%	0
5509.99.00	--Other	5%	0
5510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 OF ARTIFICIAL STAPLE FIBRES, NOT PUT UP FOR RETAIL SALE:		
5510.1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artificial staple fibres:		
5510.11.00	--Single yarn	5%	0
5510.12.00	--Multiple (folded) or cabled yarn	5%	0
5510.20.00	-Other yarn, mixed mainly or solely with wool or fine animal hair	5%	0
5510.30.00	-Other yarn, mixed mainly or solely with cotton	5%	0
5510.90.00	-Other yarn	5%	0
5511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 OF MAN-MADE STAPLE FIBRES, PUT UP FOR RETAIL SALE:		
5511.10.00	-Of synthetic staple fibres,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such fibres	5%	0
5511.20.00	-Of synthetic staple fibres, containing less than 85% by weight of such fibres	5%	0
5511.30.00	-Of artificial staple fibres	5%	0
5512	WOVEN FABRICS OF SYNTHETIC STAPLE FIBRES,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SYNTHETIC STAPLE FIBRES:		
5512.1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polyester staple fibres:		
5512.11.00	--Unbleached or bleached	5%	0
5512.19.00	--Other	5%	0
5512.2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acrylic or modacrylic staple fibres:		
5512.21.00	--Unbleached or bleached	5%	0
5512.29.00	--Other	5%	0
5512.9	-Other:		
5512.91.00	--Unbleached or bleached	5%	0
5512.99.00	--Other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5513	WOVEN FABRICS OF SYNTHETIC STAPLE FIBRES, CONTAINING LESS THAN 85% BY WEIGHT OF SUCH FIBRES, MIXED MAINLY OR SOLELY WITH COTTON, OF A WEIGHT NOT EXCEEDING 170 g/m2:		
5513.1	-Unbleached or bleached:		
5513.11.00	--Of polyester staple fibres, plain weave	5%	0
5513.12.00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of polyester staple fibres	5%	0
5513.13.00	--Other woven fabrics of polyester staple fibres	5%	0
5513.19.00	--Other woven fabrics	5%	0
5513.2	-Dyed:		
5513.21.00	--Of polyester staple fibres, plain weave	5%	0
5513.23.00	--Other woven fabrics of polyester staple fibres	5%	0
5513.29.00	--Other woven fabrics	5%	0
5513.3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5513.31.00	--Of polyester staple fibres, plain weave	5%	0
5513.39.00	--Other woven fabrics	5%	0
5513.4	-Printed:		
5513.41.00	--Of polyester staple fibres, plain weave	5%	0
5513.49.00	--Other woven fabrics	5%	0
5514	WOVEN FABRICS OF SYNTHETIC STAPLE FIBRES, CONTAINING LESS THAN 85% BY WEIGHT OF SUCH FIBRES, MIXED MAINLY OR SOLELY WITH COTTON, OF A WEIGHT EXCEEDING 170 g/m2:		
5514.1	-Unbleached or bleached:		
5514.11.00	--Of polyester staple fibres, plain weave	5%	0
5514.12.00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of polyester staple fibres	5%	0
5514.19.00	--Other woven fabrics	5%	0
5514.2	-Dyed:		
5514.21.00	--Of polyester staple fibres, plain weave	5%	0
5514.22.00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of polyester staple fibres	5%	0
5514.23.00	--Other woven fabrics of polyester staple fibres	5%	0
5514.29.00	--Other woven fabrics	5%	0
5514.30.0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5%	0
5514.4	-Printed:		
5514.41.00	--Of polyester staple fibres, plain weave	5%	0
5514.42.00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of polyester staple fibres	5%	0
5514.43.00	--Other woven fabrics of polyester staple fibres	5%	0
5514.49.00	--Other woven fabrics	5%	0
5515	OTHER WOVEN FABRICS OF SYNTHETIC STAPLE FIBRES:		
5515.1	-Of polyester staple fibres:		
5515.11.00	--Mixed mainly or solely with viscose rayon staple fibres	5%	0
5515.12.00	--Mixed mainly or solely with man-made filaments	5%	0
5515.13.00	--Mixed mainly or solely with wool or fine animal hair	5%	0
5515.19.00	--Other	5%	0
5515.2	-Of acrylic or modacrylic staple fibres:		
5515.21.00	--Mixed mainly or solely with man-made filaments	5%	0
5515.22.00	--Mixed mainly or solely with wool or fine animal hair	5%	0
5515.29.00	--Other	5%	0
5515.9	-Other woven fabrics:		
5515.91.00	--Mixed mainly or solely with man-made filaments	5%	0
5515.99.00	--Other	5%	0
5516	WOVEN FABRICS OF ARTIFICIAL STAPLE FIBRES:		
5516.1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artificial staple fibres:		
5516.11.00	--Unbleached or bleached	5%	0
5516.12.00	--Dyed	5%	0
5516.13.0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5%	0
5516.14.00	--Printed	5%	0
5516.2	-Containing less than 85 %by weight of artificial staple fibres, mixed mainly or solely with man-made filaments:		
5516.21.00	--Unbleached or bleached	5%	0
5516.22.00	--Dyed	5%	0
5516.23.0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5%	0
5516.24.00	--Printed	5%	0
5516.3	-Containing less than 85% by weight of artificial staple fibres, mixed mainly or solely with wool or fine animal hair:		
5516.31.00	--Unbleached or bleached	5%	0
5516.32.00	--Dyed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5516.33.0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5%	0
5516.34.00	--Printed	5%	0
5516.4	-Containing less than 85% by weight of artificial staple fibres, mixed mainly or solely with cotton:		
5516.41.00	--Unbleached or bleached	5%	0
5516.42.00	--Dyed	5%	0
5516.43.0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5%	0
5516.44.00	--Printed	5%	0
5516.9	-Other:		
5516.91.00	--Unbleached or bleached	5%	0
5516.92.00	--Dyed	5%	0
5516.93.0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5%	0
5516.94.00	--Printed	5%	0
56	WADDING, FELT AND NONWOVENS; SPECIAL YARNS; TWINE, CORDAGE, ROPES AND CABLES AND ARTICLES THEREOF		
5601	WADDING OF TEXTILE MATERIALS AND ARTICLES THEREOF; TEXTILE FIBRES, NOT EXCEEDING 5 MM IN LENGTH (FLOCK), TEXTILE DUST AND MILL NEPS:		
5601.2	-Wadding of textile materials and articles thereof:		
5601.21.00	--Of cotton	0%	0
5601.22.00	--Of man-made fibres	0%	0
5601.29.00	--Other	0%	0
5601.30.00	-Textile flock and dust and mill neps	0%	0
5602	FELT, WHETHER OR NOT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5602.10.00	-Needleloom felt and stitch-bonded fibre fabrics	5%	0
5602.2	-Other felt, not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5602.21.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5%	0
5602.2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5%	0
5602.90.00	-Other	5%	0
5603	NONWOVENS, WHETHER OR NOT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5603.1	-Of man-made filaments:		
5603.11.00	--Weighing not more than 25 g/m2	5%	0
5603.12.00	--Weighing more than 25 g/m2 but not more than 70 g/m2	5%	0
5603.13.00	--Weighing more than 70 g/m2 but not more than 150 g/m2	5%	0
5603.14.00	--Weighing more than 150 g/m2	5%	0
5603.9	-Other:		
5603.91.00	--Weighing not more than 25 g/m2	5%	0
5603.92.00	--Weighing more than 25 g/m2 but not more than 70 g/m2	5%	0
5603.93.00	--Weighing more than 70 g/m2 but not more than 150 g/m2	5%	0
5603.94.00	--Weighing more than 150 g/m2	5%	0
5604	RUBBER THREAD AND CORD, TEXTILE COVERED; TEXTILE YARN, AND STRIP AND THE LIKE OF 5404 OR 5405.00.00,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SHEATHED WITH RUBBER OR PLASTICS:		
5604.10.00	-Rubber thread and cord, textile covered	5%	0
5604.90.00	-Other	5%	0
5605.00.00	METALLISED YARN, WHETHER OR NOT GIMPED, BEING TEXTILE YARN, OR STRIP OR THE LIKE OF 5404 OR 5405.00.00, COMBINED WITH METAL IN THE FORM OF THREAD, STRIP OR POWDER OR COVERED WITH METAL	0%	0
5606	GIMPED YARN, AND STRIP AND THE LIKE OF 5404 OR 5405.00.00, GIMPED (OTHER THAN THOSE OF 56.05.00.00 AND GIMPED HORSEHAIR YARN); CHENILLE YARN (INCLUDING FLOCK CHENILLE YARN); LOOP WALE-YARN:		
5606.00.10	---Chenille yarn and gimped yarn	0%	0
5606.00.90	---Other	5%	0
5607	TWINE, CORDAGE, ROPES AND CABLES, WHETHER OR NOT PLAITED OR BRAIDED AND WHETHER OR NOT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SHEATHED WITH RUBBER OR PLASTICS:		
5607.2	-Of sisal or other textile fibres of the genus Agave:		
5607.21.00	--Binder or baler twine	5%	0
5607.29.00	--Other	5%	0
5607.4	-Of polyethylene or polypropylene:		
5607.41.00	--Binder or baler twine	5%	0
5607.49.00	--Other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5607.50.00	-Of other synthetic fibres	5%	0
5607.90	-Other:		
5607.90.10	---Of jute or other textile bast fibres of 5303	5%	0
5607.90.90	---Other	5%	0
5608	KNOTTED NETTING OF TWINE, CORDAGE OR ROPE; MADE UP FISHING NETS AND OTHER MADE UP NETS, OF TEXTILE MATERIALS:		
5608.1	-Of man-made textile materials:		
5608.11.00	--Made up fishing nets	0%	0
5608.19	--Other:		
5608.19.10	---Nets and netting of twine, cordage or rope	0%	0
5608.19.90	---Other	5%	0
5608.90	-Other:		
5608.90.10	---Goods, as follows: (a) fishing nets of yarn; (b) nets and netting of twine, cordage or rope	0%	0
5608.90.90	---Other	5%	0
5609.00.00	ARTICLES OF YARN, STRIP OR THE LIKE OF 5404 OR 5405.00.00, TWINE, CORDAGE, ROPE OR CABL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5%	0
57	CARPETS AND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5701	CARPETS AND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KNOTTED, WHETHER OR NOT MADE UP:		
5701.1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0%	0
5701.9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0%	0
5702	CARPETS AND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WOVEN, NOT TUFTED OR FLOCKED, WHETHER OR NOT MADE UP, INCLUDING "KELEM", "SCHUMACKS", "KARAMANIE" AND SIMILAR HAND-WOVEN RUGS:		
5702.10.00	-"Kelem", "Schumacks", "Karamanie" and similar hand-woven rugs	0%	0
5702.20.00	-Floor coverings of coconut fibres (coir)	0%	0
5702.3	-Other, of pile construction, not made up:		
5702.31.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5%	8A
5702.32.00	--Of man-made textile materials	5%	0
5702.39	--Of other textile materials:		
5702.39.10	---Goods of terry fabrics	5%	8A
5702.39.20	---Goods, NSA, as follows: (a) of sisal or jute; (b) of 100% cotton, or in which the pile is of 100% cotton	0%	0
5702.39.90	---Other	5%	8A
5702.4	-Other, of pile construction, made up:		
5702.41	--Of wool or fine animal hair:		
5702.41.10	---Handmade	0%	0
5702.41.90	---Other	5%	8A
5702.42	--Of man-made textile materials:		
5702.42.10	---Handmade	0%	0
5702.42.90	---Other	5%	0
5702.49	--Of other textile materials:		
5702.49.10	---Goods of terry fabrics	5%	8A
5702.49.20	---Goods, NSA, as follows: (a) of sisal or jute; (b) of 100% cotton, or in which the pile is of 100% cotton; (c) handmade	0%	0
5702.49.90	---Other	5%	8A
5702.50	-Other, not of pile construction, not made up:		
5702.50.10	---Goods, as follows: (a) of sisal or jute; (b) of 100% cotton	0%	0
5702.50.90	---Other	5%	8A
5702.9	-Other, not of pile construction, made up:		
5702.91	--Of wool or fine animal hair:		
5702.91.10	---Handmade	0%	0
5702.91.90	---Other	5%	8A
5702.92	--Of man-made textile materials:		
5702.92.10	---Handmade	0%	0
5702.92.90	---Other	5%	8A
5702.99	--Of other textile materials:		
5702.99.10	---Goods, as follows: (a) of sisal or jute; (b) of 100% cotton; (c) handmade	0%	0
5702.99.90	---Other	5%	8A
5703	CARPETS AND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TUFTED, WHETHER OR NOT MADE UP:		
5703.1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5%	8A
5703.20.0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5%	8A
5703.30.00	-Of other man-made textile materials	5%	8A
5703.90	-Of other textile materials:		
5703.90.10	---Goods, as follows: (a) of coir, sisal or jute; (b) of 100% cotton, or in which the pile is of 100% cotton	0%	0
5703.90.90	---Other	5%	8A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5704	CARPETS AND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OF FELT, NOT TUFTED OR FLOCKED, WHETHER OR NOT MADE UP:		
5704.10	-Tiles, having a maximum surface area of 0.3 m2:		
5704.10.10	---Produced by the needleloom process	5%	8A
5704.10.90	---Other	5%	0
5704.90	-Other:		
5704.90.10	---Produced by the needleloom process	5%	8A
5704.90.90	---Other	5%	0
5705	OTHER CARPETS AND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WHETHER OR NOT MADE UP:		
5705.00.10	---Goods of terry fabrics	5%	8A
5705.00.20	---Goods, NSA, as follows: (a) of coir, sisal or jute; (b) of 100% cotton, or in which the pile is of 100% cotton; (c) handmade	0%	0
5705.00.30	---Goods of felt	5%	0
5705.00.90	---Other	5%	8A
58	SPECIAL WOVEN FABRICS; TUFTED TEXTILE FABRICS; LACE; TAPESTRIES; TRIMMINGS; EMBROIDERY		
5801	WOVEN PILE FABRICS AND CHENILLE FABRICS, OTHER THAN FABRICS OF 5802 OR 5806:		
5801.1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5801.10.10	---Velvet	5%	0
5801.10.9	---Other:		
5801.10.91	----Cut corduroy	0%	0
5801.10.99	----Other	5%	0
5801.2	-Of cotton:		
5801.21.00	--Uncut weft pile fabrics	5%	0
5801.22.00	--Cut corduroy	0%	0
5801.23.00	--Other weft pile fabrics	5%	0
5801.26.00	--Chenille fabrics	5%	0
5801.27	--Warp pile fabrics:		
5801.27.10	---Velvet	5%	0
5801.27.90	---Other	5%	0
5801.3	-Of man-made fibres:		
5801.31.00	--Uncut weft pile fabrics	5%	0
5801.32.00	--Cut corduroy	0%	0
5801.33.00	--Other weft pile fabrics	5%	0
5801.36.00	--Chenille fabrics	5%	0
5801.37	--Warp pile fabrics:		
5801.37.10	---Velvet	5%	0
5801.37.90	---Other	5%	0
5801.90	-Of other textile materials:		
5801.90.10	---Velvet	5%	0
5801.90.90	---Other	5%	0
5802	TERRY TOWELLING AND SIMILAR WOVEN TERRY FABRICS, OTHER THAN NARROW FABRICS OF 5806; TUFTED TEXTILE FABRICS, OTHER THAN PRODUCTS OF 5703:		
5802.1	-Terry towelling and similar woven terry fabrics, of cotton:		
5802.11.00	--Unbleached	10%	5
5802.19.00	--Other	10%	5
5802.20.00	-Terry towelling and similar woven terry fabrics, of other textile materials	5%	0
5802.30.00	-Tufted textile fabrics	5%	0
5803	GAUZE, OTHER THAN NARROW FABRICS OF 5806:		
5803.00.10	---Of cotton	0%	0
5803.00.9	---Of other textile materials:		
5803.00.91	----Containing 20% or more by weight of man-made fibres	5%	0
5803.00.99	----Other	0%	0
5804	TULLES AND OTHER NET FABRICS, NOT INCLUDING WOVEN, KNITTED OR CROCHETED FABRICS; LACE IN THE PIECE, IN STRIPS OR IN MOTIFS, OTHER THAN FABRICS OF 6002 to 6006:		
5804.10.00	-Tulles and other net fabrics	0%	0
5804.2	-Mechanically made lace:		
5804.21.00	--Of man-made fibres	0%	0
5804.2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0%	0
5804.30.00	-Hand-made lace	0%	0
5805.00.00	HAND-WOVEN TAPESTRIES OF THE TYPES GOBELINS, FLANDERS, AUBUSSON, BEAUVAIS AND THE LIKE, AND NEEDLE-WORKED TAPESTRIES (FOR EXAMPLE, PETIT POINT, CROSS STITCH), WHETHER OR NOT MADE UP	0%	0
5806	NARROW WOVEN FABRICS, OTHER THAN GOODS OF 5807; NARROW FABRICS CONSISTING OF WARP WITHOUT WEFT ASSEMBLED BY MEANS OF AN ADHESIVE (BOLDUCS):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5806.10.00	-Woven pile fabrics (including terry towelling and similar terry fabrics) and chenille fabrics	5%	0
5806.20.00	-Other woven fabrics, containing by weight 5% or more of elastomeric yarn or rubber thread	5%	0
5806.3	-Other woven fabrics:		
5806.31.00	--Of cotton	5%	0
5806.32.00	--Of man-made fibres	5%	0
5806.39	--Of other textile materials:		
5806.39.10	---Of 100% hemp, of 100% jute or of 100% hemp and jute	0%	0
5806.39.90	---Other	5%	0
5806.40.00	-Fabrics consisting of warp without weft assembled by means of an adhesive (bolducs)	0%	0
5807	LABELS, BADGES AND SIMILAR ARTICLES OF TEXTILE MATERIALS, IN THE PIECE, IN STRIPS OR CUT TO SHAPE OR SIZE, NOT EMBROIDERED:		
5807.10.00	-Woven	5%	0
5807.90.00	-Other	5%	0
5808	BRAIDS IN THE PIECE; ORNAMENTAL TRIMMINGS IN THE PIECE, WITHOUT EMBROIDERY, OTHER THAN KNITTED OR CROCHETED; TASSELS, POMPONS AND SIMILAR ARTICLES:		
5808.10.00	-Braids in the piece	5%	0
5808.90.00	-Other	5%	0
5809.00.00	WOVEN FABRICS OF METAL THREAD AND WOVEN FABRICS OF METALLISED YARN OF 5605.00.00, OF A KIND USED IN APPAREL, AS FURNISHING FABRICS OR FOR SIMILAR PURPOS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0%	0
5810	EMBROIDERY IN THE PIECE, IN STRIPS OR IN MOTIFS:		
5810.10.00	-Embroidery without visible ground	5%	0
5810.9	-Other embroidery:		
5810.91.00	--Of cotton	5%	0
5810.92.00	--Of man-made fibres	5%	0
5810.9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5%	0
5811.00.00	QUILTED TEXTILE PRODUCTS IN THE PIECE, COMPOSED OF ONE OR MORE LAYERS OF TEXTILE MATERIALS ASSEMBLED WITH PADDING BY STITCHING OR OTHERWISE, OTHER THAN EMBROIDERY OF 5810	5%	0
59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TEXTILE FABRICS; TEXTILE ARTICLES OF A KIND SUITABLE FOR INDUSTRIAL USE		
5901	TEXTILE FABRICS COATED WITH GUM OR AMYLACEOUS SUBSTANCES, OF A KIND USED FOR THE OUTER COVERS OF BOOKS OR THE LIKE; TRACING CLOTH; PREPARED PAINTING CANVAS; BUCKRAM AND SIMILAR STIFFENED TEXTILE FABRICS OF A KIND USED FOR HAT FOUNDATIONS:		
5901.10.00	-Textile fabrics coated with gum or amylaceous substances, of a kind used for the outer covers of books or the like	0%	0
5901.90.00	-Other	0%	0
5902	TYRE CORD FABRIC OF HIGH TENACITY YARN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POLYESTERS OR VISCOSE RAYON:		
5902.10.0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5%	0
5902.20.00	-Of polyesters	5%	0
5902.90.00	-Other	5%	0
5903	TEXTILE FABRICS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WITH PLASTICS, OTHER THAN THOSE OF 5902:		
5903.10	-With poly(vinyl chloride):		
5903.10.10	---Goods with plastic addition of 34 g/m2 or less, as follows: (a) having a woven base fabric of cotton, containing 20% or more by weight of man-made fibres; (b) having a woven base fabric of man-made fibres, other than of polyolefins	5%	0
5903.10.90	---Other	5%	0
5903.20	-With polyurethane: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5903.20.10	---Having a woven base fabric, as follows: (a) of cotton, containing 20% or more by weight of man-made fibres; (b) of man-made fibres, other than of polyolefins	5%	0
5903.20.90	---Other	5%	0
5903.90	-Other:		
5903.90.10	---Having a woven base fabric, as follows: (a) of cotton, containing 20% or more by weight of man-made fibres; (b) of man-made fibres, other than of polyolefins	5%	0
5903.90.90	---Other	5%	0
5904	LINOLEUM, WHETHER OR NOT CUT TO SHAPE; FLOOR COVERINGS CONSISTING OF A COATING OR COVERING APPLIED ON A TEXTILE BACKING, WHETHER OR NOT CUT TO SHAPE:		
5904.10.00	-Linoleum	5%	0
5904.90.00	-Other	5%	0
5905	TEXTILE WALL COVERINGS:		
5905.00.10	---Backed with permanently affixed paper	5%	0
5905.00.20	---Goods, as follows: (a) of cotton, containing less than 20% by weight of man-made fibres; (b) of wool or fine animal hair	5%	0
5905.00.30	---Goods, as follows: (a) of cotton, NSA; (b) of man-made fibres	5%	0
5905.00.90	---Of other textile materials	0%	0
5906	RUBBERISED TEXTILE FABRICS, OTHER THAN THOSE OF 5902:		
5906.10.00	-Adhesive tape of a width not exceeding 20 cm	5%	0
5906.9	-Other:		
5906.91	--Knitted or crocheted:		
5906.91.10	---Fabrics laminated with expanded or foam rubber	0%	0
5906.91.90	---Other	5%	0
5906.99.00	--Other	5%	0
5907.00.00	TEXTILE FABRICS OTHERWISE IMPREGNATED, COATED OR COVERED; PAINTED CANVAS BEING THEATRICAL SCENERY, STUDIO BACK-CLOTHS OR THE LIKE	5%	0
5908.00.00	TEXTILE WICKS, WOVEN, PLAITED OR KNITTED, FOR LAMPS, STOVES, LIGHTERS, CANDLES OR THE LIKE; INCANDESCENT GAS MANTLES AND TUBULAR KNITTED GAS MANTLE FABRIC THEREFOR, WHETHER OR NOT IMPREGNATED	5%	0
5909	TEXTILE HOSEPIPING AND SIMILAR TEXTILE TUBING, WITH OR WITHOUT LINING, ARMOUR OR ACCESSORIES OF OTHER MATERIALS:		
5909.00.10	---Having an internal diameter not exceeding 110 mm	5%	0
5909.00.90	---Other	0%	0
5910.00.00	TRANSMISSION OR CONVEYOR BELTS OR BELTING, OF TEXTILE MATERIAL, WHETHER OR NOT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WITH PLASTICS, OR REINFORCED WITH METAL OR OTHER MATERIAL	5%	0
5911	TEXTILE PRODUCTS AND ARTICLES, FOR TECHNICAL USES, SPECIFIED IN NOTE 7 TO THIS CHAPTER:		
5911.10.00	-Textile fabrics, felt and felt-lined woven fabrics, coated, covered or laminated with rubber, leather or other material, of a kind used for card clothing, and similar fabrics of a kind used for other technical purposes, including narrow fabrics made of vevlvet impregnated with rubber, for covering weaving spindles (weaving beams)	5%	0
5911.20.00	-Bolting cloth, whether or not made up	5%	0
5911.3	-Textile fabrics and felts, endless or fitted with linking devices, of a kind used in paper-making or similar machines (for example, for pulp or asbestos-cement):		
5911.31.00	--Weighing less than 650 g/m2	5%	0
5911.32.00	--Weighing 650 g/m2 or more	5%	0
5911.40.00	-Straining cloth of a kind used in oil presses or the like, including that of human hair	5%	0
5911.90	-Other:		
5911.90.10	---Goods, as follows: (a) articles; (b) braids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5911.90.90	---Other	5%	0
60	KNITTED OR CROCHETED FABRICS		
6001	PILE FABRICS, INCLUDING "LONG PILE" FABRICS AND TERRY FABRICS, KNITTED OR CROCHETED:		
6001.10.00	-"Long pile" fabrics	5%	0
6001.2	-Looped pile fabrics:		
6001.21.00	--Of cotton	10%	5
6001.22.00	--Of man-made fibres	5%	0
6001.2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5%	0
6001.9	-Other:		
6001.91.00	--Of cotton	5%	0
6001.92.00	--Of man-made fibres	5%	0
6001.9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5%	0
6002	KNITTED OR CROCHETED FABRICS OF A WIDTH NOT EXCEEDING 30 cm, CONTAINING BY WEIGHT 5% OR MORE OF ELASTOMETRIC YARN OR RUBBER THREAD, OTHER THAN THOSE OF HEADING 6001:		
6002.40.00	-Containing by weight 5% or more of elastomeric yarn but not containing rubber thread	5%	0
6002.90.00	-Other	5%	0
6003	KNITTED OR CROCHETED FABRICS OF A WIDTH NOT EXCEEDING 30 CM, OTHER THAN THOSE OF 6001 OR 6002:		
6003.1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5%	0
6003.20.00	-Of cotton	5%	0
6003.30.00	-Of synthetic fibres	5%	0
6003.40.00	-Of artificial fibres	5%	0
6003.90.00	-Other	5%	0
6004	KNITTED OR CROCHETED FABRICS OF A WIDTH EXCEEDING 30 cm, CONTAINING BY WEIGHT 5% OR MORE OF ELASTOMETRIC YARN OR RUBBER THREAD, OTHER THAN THOSE OF 6001:		
6004.10.00	-Containing by weight 5% or more of elastomeric yarn but not containing rubber thread	5%	0
6004.90.00	-Other	5%	0
6005	WARP KNIT FABRICS (INCLUDING THOSE MADE ON GALLOON KNITTING MACHINES), OTHER THAN THOSE OF 6001 TO 6004:		
6005.2	-Of cotton:		
6005.21.00	--Unbleached or bleached	5%	0
6005.22.00	--Dyed	5%	0
6005.23.0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5%	0
6005.24.00	--Printed	5%	0
6005.3	-Of synthetic fibres:		
6005.31.00	--Unbleached or bleached	5%	0
6005.32.00	--Dyed	5%	0
6005.33.0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5%	0
6005.34.00	--Printed	5%	0
6005.4	-Of artificial fibres:		
6005.41.00	--Unbleached or bleached	5%	0
6005.42.00	--Dyed	5%	0
6005.43.0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5%	0
6005.44.00	--Printed	5%	0
6005.90.00	-Other	5%	0
6006	OTHER KNITTED OR CROCHETED FABRICS:		
6006.1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5%	0
6006.2	-Of cotton:		
6006.21.00	--Unbleached or bleached	5%	0
6006.22.00	--Dyed	5%	0
6006.23.0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5%	0
6006.24.00	--Printed	5%	0
6006.3	-Of synthetic fibres:		
6006.31.00	--Unbleached or bleached	5%	0
6006.32.00	--Dyed	5%	0
6006.33.0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5%	0
6006.34.00	--Printed	5%	0
6006.4	-Of artifical fibres:		
6006.41.00	--Unbleached or bleached	5%	0
6006.42.00	--Dyed	5%	0
6006.43.0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5%	0
6006.44.00	--Printed	5%	0
6006.90.00	-Other	5%	0
61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KNITTED OR CROCHETED		
6101	MEN'S OR BOYS' OVERCOATS, CAR-COATS, CAPES, CLOAKS, ANORAKS (INCLUDING SKI-JACKETS), WIND-CHEATERS, WIND-JACKET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OTHER THAN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THOSE OF 6103:		
6101.20.00	-Of cotton	10%	5
6101.30.00	-Of man-made fibres	10%	5
6101.9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102	WOMEN'S OR GIRLS' OVERCOATS, CAR-COATS, CAPES, CLOAKS, ANORAKS (INCLUDING SKI-JACKETS), WIND-CHEATERS, WIND-JACKET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OTHER THAN THOSE OF 6104:		
6102.1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0%	5
6102.20.00	-Of cotton	10%	5
6102.30.00	-Of man-made fibres	10%	5
6102.9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103	MEN'S OR BOYS' SUITS, ENSEMBLES, JACKETS, BLAZERS, TROUSERS, BIB AND BRACE OVERALLS, BREECHES AND SHORTS (OTHER THAN SWIMWEAR), KNITTED OR CROCHETED:		
6103.10.00	-Suits	10%	5
6103.2	-Ensembles:		
6103.22.00	--Of cotton	10%	5
6103.23.00	--Of synthetic fibres	10%	5
6103.2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103.3	-Jackets and blazers:		
6103.31.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0%	5
6103.32.00	--Of cotton	10%	5
6103.33.00	--Of synthetic fibres	10%	5
6103.3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103.4	-Trousers, bib and brace overalls, breeches and shorts:		
6103.41.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0%	5
6103.42.00	--Of cotton	10%	5
6103.43.00	--Of synthetic fibres	10%	5
6103.4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104	WOMEN'S OR GIRLS' SUITS, ENSEMBLES, JACKETS, BLAZERS, DRESSES, SKIRTS, DIVIDED SKIRTS, TROUSERS, BIB AND BRACE OVERALLS, BREECHES AND SHORTS (OTHER THAN SWIMWEAR), KNITTED OR CROCHETED:		
6104.1	-Suits:		
6104.13.00	--Of synthetic fibres	10%	5
6104.1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104.2	-Ensembles:		
6104.22.00	--Of cotton	10%	5
6104.23.00	--Of synthetic fibres	10%	5
6104.2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104.3	-Jackets and blazers:		
6104.31.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0%	5
6104.32.00	--Of cotton	10%	5
6104.33.00	--Of synthetic fibres	10%	5
6104.3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104.4	-Dresses:		
6104.41.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0%	5
6104.42.00	--Of cotton	10%	5
6104.43.00	--Of synthetic fibres	10%	5
6104.44.00	--Of artificial fibres	10%	5
6104.4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104.5	-Skirts and divided skirts:		
6104.51.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0%	5
6104.52.00	--Of cotton	10%	5
6104.53.00	--Of synthetic fibres	10%	5
6104.5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104.6	-Trousers, bib and brace overalls, breeches and shorts:		
6104.61.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0%	5
6104.62.00	--Of cotton	10%	5
6104.63.00	--Of synthetic fibres	10%	5
6104.6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105	MEN'S OR BOYS' SHIRTS, KNITTED OR CROCHETED:		
6105.10.00	-Of cotton	10%	5
6105.20.00	-Of man-made fibres	10%	5
6105.9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106	WOMEN'S OR GIRLS' BLOUSES, SHIRTS AND SHIRT-BLOUSES, KNITTED OR CROCHETED:		
6106.10.00	-Of cotton	10%	5
6106.20.00	-Of man-made fibres	10%	5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6106.9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107	MEN'S OR BOYS' UNDERPANTS, BRIEFS, NIGHT-SHIRTS, PYJAMAS, BATHROBES, DRESSING GOWN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6107.1	-Underpants and briefs:		
6107.11.00	--Of cotton	10%	5
6107.12.00	--Of man-made fibres	10%	5
6107.1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107.2	-Nightshirts and pyjamas:		
6107.21.00	--Of cotton	10%	5
6107.22.00	--Of man-made fibres	10%	5
6107.2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107.9	-Other:		
6107.91.00	--Of cotton	10%	5
6107.9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108	WOMEN'S OR GIRLS' SLIPS, PETTICOATS, BRIEFS, PANTIES, NIGHT-DRESSES, PYJAMAS, NEGLIGES, BATHROBES, DRESSING GOWN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6108.1	-Slips and petticoats:		
6108.11.00	--Of man-made fibres	10%	5
6108.1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108.2	-Briefs and panties:		
6108.21.00	--Of cotton	10%	5
6108.22.00	--Of man-made fibres	10%	5
6108.2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108.3	-Nightdresses and pyjamas:		
6108.31.00	--Of cotton	10%	5
6108.32.00	--Of man-made fibres	10%	5
6108.3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108.9	-Other:		
6108.91.00	--Of cotton	10%	5
6108.92.00	--Of man-made fibres	10%	5
6108.9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109	T-SHIRTS, SINGLETS AND OTHER VESTS, KNITTED OR CROCHETED:		
6109.10.00	-Of cotton	10%	5
6109.9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110	JERSEYS, PULLOVERS, CARDIGANS, WAISTCOAT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6110.1	-Of wool or fine animal hair:		
6110.11.00	--Of wool	10%	5
6110.12.00	--Of Kashmir (cashmere) goats	10%	5
6110.19.00	--Other	10%	5
6110.20.00	-Of cotton	10%	5
6110.30.00	-Of man-made fibres	10%	5
6110.9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111	BABIES' GARMENTS AND CLOTHING ACCESSORIES, KNITTED OR CROCHETED:		
6111.20	-Of cotton:		
6111.20.10	---Stockings and understockings	5%	0
6111.20.20	---Clothing accessories, NSA, other than socks, ankle-socks, sockettes and the like	0%	0
6111.20.90	---Other	10%	5
6111.30	-Of synthetic fibres:		
6111.30.10	---Stockings and understockings	5%	0
6111.30.20	---Clothing accessories, NSA, other than socks, ankle-socks, sockettes and the like	0%	0
6111.30.90	---Other	10%	5
6111.90	-Of other textile materials:		
6111.90.10	---Stockings and understockings	5%	0
6111.90.20	---Clothing accessories, NSA, other than socks, ankle-socks, sockettes and the like	0%	0
6111.90.90	---Other	10%	5
6112	TRACK SUITS, SKI SUITS AND SWIMWEAR, KNITTED OR CROCHETED:		
6112.1	-Track suits:		
6112.11.00	--Of cotton	10%	5
6112.12.00	--Of synthetic fibres	10%	5
6112.1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112.20.00	-Ski suits	10%	5
6112.3	-Men's or boys' swimwear:		
6112.31.00	--Of synthetic fibres	10%	5
6112.3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112.4	-Women's or girls' swimwear:		
6112.41.00	--Of synthetic fibres	10%	5
6112.4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113	GARMENTS, MADE UP OF KNITTED OR CROCHETED FABRICS OF 5903, 5906 OR 5907.00:		
6113.00.1	---Of fabric, to which, if imported, 5906 would apply:		
6113.00.11	----Diving dress, wetsuits and similar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garments		
6113.00.12	----Goods, NSA, of fabric laminated with expanded or foam rubber	0%	0
6113.00.19	----Other	10%	5
6113.00.20	---Anti-radiation suits, anti-contamination suits, and similar protective garments	5%	0
6113.00.90	---Other	10%	5
6114	OTHER GARMENTS, KNITTED OR CROCHETED:		
6114.20.00	-Of cotton	10%	5
6114.30.00	-Of man-made fibres	10%	5
6114.9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115	PANTY HOSE, TIGHTS, STOCKINGS, SOCKS AND OTHER HOSIERY, INCLUDING GRADUATED COMPRESSION HOSIERY (FOR EXAMPLE, STOCKINGS FOR VARICOSE VEINS) AND FOOTWEAR WITHOUT APPLIED SOLES, KNITTED OR CROCHETED:		
6115.10	-Graduated compression hosiery (for example, stockings for varicose veins):		
6115.10.10	---Goods, as follows: (a) panty hose and tights; (b) socks, ankle socks, sockettes and the like	10%	5
6115.10.90	---Other	5%	0
6115.2	-Other panty hose and tights:		
6115.21	--Of synthetic fibres,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67 decitex:		
6115.21.10	---Less than 44 decitex, other than of elastic fabric	10%	5
6115.21.90	---Other	10%	5
6115.22.00	--Of synthetic fibres, measuring per single yarn 67 decitex or more	10%	5
6115.2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115.30.00	-Other women's full length or knee-length hosiery,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67 decitex	5%	0
6115.9	-Other:		
6115.94	--Of wool or fine animal hair:		
6115.94.10	---Socks, ankle-socks, sockettes and the like	10%	5
6115.94.90	---Other	5%	0
6115.95	--Of cotton:		
6115.95.10	---Socks, ankle-socks, sockettes and the like	10%	5
6115.95.90	---Other	5%	0
6115.96	--Of synthetic fibres:		
6115.96.10	---Socks, ankle-socks, sockettes and the like	10%	5
6115.96.90	---Other	5%	0
6115.99	--Of other textile materials:		
6115.99.10	---Socks, ankle-socks, sockettes and the like	10%	5
6115.99.90	---Other	5%	0
6116	GLOVES, MITTENS AND MITTS, KNITTED OR CROCHETED:		
6116.10.00	-Impregnated, coated or covered with plastics or rubber	0%	0
6116.9	-Other:		
6116.91.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0%	0
6116.92.00	--Of cotton	0%	0
6116.93.00	--Of synthetic fibres	0%	0
6116.9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0%	0
6117	OTHER MADE UP CLOTHING ACCESSORIES, KNITTED OR CROCHETED; KNITTED OR CROCHETED PARTS OF GARMENTS OR OF CLOTHING ACCESSORIES:		
6117.10.00	-Shawls, scarves, mufflers, mantillas, veils and the like	0%	0
6117.80	-Other accessories:		
6117.80.10	---Ties, bow ties and cravats	5%	0
6117.80.90	---Other	0%	0
6117.90	-Parts:		
6117.90.10	---Parts, as follows: (a) of elastic or rubberised fabric; (b) of padded skiwear; (c) of parkas	10%	5
6117.90.20	---Of goods, NSA, as follows: (a) stockings and understockings; (b) ties and bow ties	5%	0
6117.90.30	---Of clothing accessories, NSA, other than socks, ankle-socks, sockettes and the like	0%	0
6117.90.40	---Shoulder pads	0%	0
6117.90.90	---Other	10%	5
62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NOT KNITTED OR CROCHETED		
6201	MEN'S OR BOYS' OVERCOATS, CAR-COATS, CAPES, CLOAKS, ANORAKS (INCLUDING SKI-JACKETS), WIND-CHEATERS, WIND-JACKETS AND SIMILAR ARTICLES, OTHER THAN THOSE OF 6203: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6201.1	-Overcoats, raincoats, car-coats, capes, cloaks and similar articles:		
6201.11.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0%	5
6201.12.00	--Of cotton	10%	5
6201.13.00	--Of man-made fibres	10%	5
6201.1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201.9	-Other:		
6201.91.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0%	5
6201.92.00	--Of cotton	10%	5
6201.93.00	--Of man-made fibres	10%	5
6201.9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202	WOMEN'S OR GIRLS' OVERCOATS, CAR-COATS, CAPES, CLOAKS, ANORAKS (INCLUDING SKI-JACKETS), WIND-CHEATERS, WIND-JACKETS AND SIMILAR ARTICLES, OTHER THAN THOSE OF 6204:		
6202.1	-Overcoats, raincoats, car-coats, capes, cloaks and similar articles:		
6202.11.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0%	5
6202.12.00	--Of cotton	10%	5
6202.13.00	--Of man-made fibres	10%	5
6202.1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202.9	-Other:		
6202.91.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0%	5
6202.92.00	--Of cotton	10%	5
6202.93.00	--Of man-made fibres	10%	5
6202.9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203	MEN'S OR BOYS' SUITS, ENSEMBLES, JACKETS, BLAZERS, TROUSERS, BIB AND BRACE OVERALLS, BREECHES AND SHORTS (OTHER THAN SWIMWEAR):		
6203.1	-Suits:		
6203.11.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0%	8A
6203.12.00	--Of synthetic fibres	10%	8A
6203.1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8A
6203.2	-Ensembles:		
6203.22.00	--Of cotton	10%	8A
6203.23.00	--Of synthetic fibres	10%	8A
6203.2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8A
6203.3	-Jackets and blazers:		
6203.31.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0%	8A
6203.32.00	--Of cotton	10%	8A
6203.33.00	--Of synthetic fibres	10%	8A
6203.3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8A
6203.4	-Trousers, bib and brace overalls, breeches and shorts:		
6203.41.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0%	8A
6203.42.00	--Of cotton	10%	8A
6203.43.00	--Of synthetic fibres	10%	8A
6203.4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8A
6204	WOMEN'S OR GIRLS' SUITS, ENSEMBLES, JACKETS, BLAZERS, DRESSES, SKIRTS, DIVIDED SKIRTS, TROUSERS, BIB AND BRACE OVERALLS, BREECHES AND SHORTS (OTHER THAN SWIMWEAR):		
6204.1	-Suits:		
6204.11.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0%	5
6204.12.00	--Of cotton	10%	5
6204.13.00	--Of synthetic fibres	10%	5
6204.1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204.2	-Ensembles:		
6204.21.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0%	5
6204.22.00	--Of cotton	10%	5
6204.23.00	--Of synthetic fibres	10%	5
6204.2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204.3	-Jackets and blazers:		
6204.31.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0%	5
6204.32.00	--Of cotton	10%	5
6204.33.00	--Of synthetic fibres	10%	5
6204.3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204.4	-Dresses:		
6204.41.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0%	5
6204.42.00	--Of cotton	10%	5
6204.43.00	--Of synthetic fibres	10%	5
6204.44.00	--Of artificial fibres	10%	5
6204.4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204.5	-Skirts and divided skirts:		
6204.51.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0%	5
6204.52.00	--Of cotton	10%	5
6204.53.00	--Of synthetic fibres	10%	5
6204.5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204.6	-Trousers, bib and brace overalls, breeches and shorts:		
6204.61.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0%	5
6204.62.00	--Of cotton	10%	5
6204.63.00	--Of synthetic fibres	10%	5
6204.6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205	MEN'S OR BOYS' SHIRTS: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6205.20.00	-Of cotton	10%	5
6205.30.00	-Of man-made fibres	10%	5
6205.9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206	WOMEN'S OR GIRLS' BLOUSES, SHIRTS AND SHIRT-BLOUSES:		
6206.10.00	-Of silk or silk waste	10%	5
6206.2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10%	5
6206.30.00	-Of cotton	10%	5
6206.40.00	-Of man-made fibres	10%	5
6206.9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207	MEN'S OR BOYS' SINGLETS AND OTHER VESTS, UNDERPANTS, BRIEFS, NIGHTSHIRTS, PYJAMAS, BATHROBES, DRESSING GOWNS AND SIMILAR ARTICLES:		
6207.1	-Underpants and briefs:		
6207.11.00	--Of cotton	10%	5
6207.1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207.2	-Nightshirts and pyjamas:		
6207.21.00	--Of cotton	10%	5
6207.22.00	--Of man-made fibres	10%	5
6207.2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207.9	-Other:		
6207.91.00	--Of cotton	10%	5
6207.9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208	WOMEN'S OR GIRLS' SINGLETS AND OTHER VESTS, SLIPS, PETTICOATS, BRIEFS, PANTIES, NIGHTDRESSES, PYJAMAS, NEGLIGES, BATHROBES, DRESSING GOWNS AND SIMILAR ARTICLES:		
6208.1	-Slips and petticoats:		
6208.11.00	--Of man-made fibres	10%	5
6208.1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208.2	-Nightdresses and pyjamas:		
6208.21.00	--Of cotton	10%	5
6208.22.00	--Of man-made fibres	10%	5
6208.2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208.9	-Other:		
6208.91.00	--Of cotton	10%	5
6208.92.00	--Of man-made fibres	10%	5
6208.9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209	BABIES' GARMENTS AND CLOTHING ACCESSORIES:		
6209.20	-Of cotton:		
6209.20.10	---Garments, of nonwovens, being fabric not impregnated or coated, other than: (a) padded skiwear; (b) parkas	5%	0
6209.20.20	---Clothing accessories	0%	0
6209.20.90	---Other	10%	5
6209.30	-Of synthetic fibres:		
6209.30.10	---Garments, of nonwovens, being fabric not impregnated or coated, other than: (a) padded skiwear; (b) parkas	5%	0
6209.30.20	---Clothing accessories	0%	0
6209.30.90	---Other	10%	5
6209.90	-Of other textile materials:		
6209.90.10	---Garments, of nonwovens, being fabric not impregnated or coated, other than: (a) padded skiwear; (b) parkas	5%	0
6209.90.20	---Clothing accessories	0%	0
6209.90.90	---Other	10%	5
6210	GARMENTS, MADE UP OF FABRICS OF 5602, 5603, 5903, 5906 OR 5907.00.00:		
6210.10	-Of fabrics of 5602 or 5603:		
6210.10.10	---Of nonwovens, being fabric not impregnated or coated	5%	0
6210.10.90	---Other	10%	5
6210.20.00	-Other garments, of the type described in 6201.11.00 to 6201.19.00	10%	5
6210.30.00	-Other garments, of the type described in 6202.11.00 to 6202.19.00	10%	5
6210.40	-Other men's or boys' garments:		
6210.40.10	---Anti-radiation suits, anti-contamination suits, and similar protective garments	5%	0
6210.40.20	---Diving dress, wetsuits and similar garments	5%	0
6210.40.90	---Other	10%	5
6210.50	-Other women's or girls' garments:		
6210.50.10	---Anti-radiation suits, anti-contamination suits, and similar protective garments	5%	0
6210.50.20	---Diving dress, wetsuits and similar garments	5%	0
6210.50.90	---Other	10%	5
6211	TRACK SUITS, SKI SUITS AND SWIMWEAR; OTHER GARMENTS:		
6211.1	-Swimwear:		
6211.11.00	--Men's or boys'	10%	5
6211.12.00	--Women's or girls'	10%	5
6211.20.00	-Ski suits	10%	5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6211.3	-Other garments, men's or boys':		
6211.32	--Of cotton:		
6211.32.10	---Collars, cuffs and shirt fronts	0%	0
6211.32.90	---Other	10%	5
6211.33	--Of man-made fibres:		
6211.33.10	---Collars, cuffs and shirt fronts	0%	0
6211.33.90	---Other	10%	5
6211.39	--Of other textile materials:		
6211.39.10	---Collars, cuffs and shirt fronts	0%	0
6211.39.90	---Other	10%	5
6211.4	-Other garments, women's or girls':		
6211.42.00	--Of cotton	10%	5
6211.43.00	--Of man-made fibres	10%	5
6211.4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212	BRASSIÈRES, GIRDLES, CORSETS, BRACES, SUSPENDERS, GARTERS AND SIMILAR ARTICLES AND PARTS THEREOF, WHETHER OR NOT KNITTED OR CROCHETED:		
6212.10.00	-Brassieres	10%	5
6212.20.00	-Girdles and panty-girdles	10%	5
6212.30.00	-Corselettes	10%	5
6212.90	-Other:		
6212.90.10	---Goods, as follows: (a) corsets, body suits and the like; (b) parts of brassieres, other than: (i) adjustable shoulder straps; or (ii) brassiere back replacements, comprising elastic, textile fabric, hooks and eyes; (c) parts of corsets, girdles, panty-girdles, corselettes, body suits and the like	10%	5
6212.90.90	---Other	5%	0
6213	HANDKERCHIEFS:		
6213.20.00	-Of cotton	5%	0
6213.9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5%	0
6214	SHAWLS, SCARVES, MUFFLERS, MANTILLAS, VEILS AND THE LIKE:		
6214.10.00	-Of silk or silk waste	0%	0
6214.20.0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0%	0
6214.30.00	-Of synthetic fibres	0%	0
6214.40.00	-Of artificial fibres	0%	0
6214.9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0%	0
6215	TIES, BOW TIES AND CRAVATS:		
6215.10.00	-Of silk or silk waste	5%	0
6215.20.00	-Of man-made fibres	5%	0
6215.9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5%	0
6216.00.00	GLOVES, MITTENS AND MITTS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6217	OTHER MADE UP CLOTHING ACCESSORIES; PARTS OF GARMENTS OR OF CLOTHING ACCESSORIES, OTHER THAN THOSE OF 6212:		
6217.10	-Accessories:		
6217.10.10	---Goods, as follows: (a) adjustable shoulder straps of a kind used on female garments; (b) collars and yokes for female garments; (c) footwear	5%	0
6217.10.90	---Other	0%	0
6217.90	-Parts:		
6217.90.10	---Of goods, as follows: (a) adjustable shoulder straps of a kind used on female garments; (b) collars and yokes for female garments; (c) diving suits, wetsuits and similar articles; (d) footwear; (e) handkerchiefs; (f) of nonwovens of garments of non-wovens; (g) ties, bow ties and cravats	5%	0
6217.90.20	---Of clothing accessories, NSA, and of goods of 6211.32.10, 6211.33.10 or 6211.39.10	0%	0
6217.90.30	---Shoulder pads	0%	0
6217.90.90	---Other	10%	5
63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SETS; WORN CLOTHING AND WORN TEXTILE ARTICLES; RAGS		
6301	BLANKETS AND TRAVELLING RUGS:		
6301.10.00	-Electric blankets	5%	0
6301.20.00	-Blankets (other than electric blankets) and travelling rugs, of wool or of fine animal hair	5%	0
6301.30	-Blankets (other than electric blankets) and travelling rugs, of cotton:		
6301.30.10	---Goods, weighing 339 g/m2 or more, of 100% cotton	0%	0
6301.30.90	---Other	5%	0
6301.40.00	-Blankets (other than electric blankets) and travelling rugs, of synthetic fibres	5%	0
6301.90	-Other blankets and travelling rugs:		
6301.90.10	---Goods, weighing 339 g/m2 or more, of 100% viscose fibre	0%	0
6301.90.90	---Other	5%	0
6302	BED LINEN, TABLE LINEN, TOILET LINEN AND KITCHEN LINEN:		
6302.10.00	-Bed linen, knitted or crocheted	10%	5
6302.2	-Other bed linen, printed: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6302.21.00	--Of cotton	10%	5
6302.22.00	--Of man-made fibres	10%	5
6302.2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302.3	-Other bed linen:		
6302.31.00	--Of cotton	10%	5
6302.32.00	--Of man-made fibres	10%	5
6302.3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10%	5
6302.40.00	-Table linen, knitted or crocheted	5%	0
6302.5	-Other table linen:		
6302.51	--Of cotton:		
6302.51.10	---Hand-embroidered or hand-appliqued	0%	0
6302.51.90	---Other	5%	0
6302.53.00	--Of man-made fibres	5%	0
6302.5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5%	0
6302.60.00	-Toilet linen and kitchen linen, of terry towelling or similar terry fabrics, of cotton	10%	5
6302.9	-Other:		
6302.91	--Of cotton:		
6302.91.10	---Tea towels	0%	0
6302.91.20	---Goods, NSA, as follows: (a) facewashers; (b) towels	10%	5
6302.91.90	---Other	5%	0
6302.93.00	--Of man-made fibres	5%	0
6302.99	--Of other textile materials:		
6302.99.10	---Tea towels of flax	0%	0
6302.99.90	---Other	5%	0
6303	CURTAINS (INCLUDING DRAPES) AND INTERIOR BLINDS; CURTAIN OR BED VALANCES:		
6303.1	-Knitted or crocheted:		
6303.12	--Of synthetic fibres:		
6303.12.10	---Curtains	10%	5
6303.12.90	---Other	5%	0
6303.19	--Of other textile materials:		
6303.19.10	---Curtains	10%	5
6303.19.90	---Other	5%	0
6303.9	-Other:		
6303.91	--Of cotton:		
6303.91.10	---Goods, as follows: (a) bed valances (ruffles); (b) curtains	10%	5
6303.91.90	---Other	5%	0
6303.92	--Of synthetic fibres:		
6303.92.10	---Goods, as follows: (a) bed valances (ruffles); (b) curtains	10%	5
6303.92.90	---Other	5%	0
6303.99	--Of other textile materials:		
6303.99.10	---Goods, as follows: (a) bed valances (ruffles); (b) curtains	10%	5
6303.99.90	---Other	5%	0
6304	OTHER FURNISHING ARTICLES, EXCLUDING THOSE OF 9404:		
6304.1	-Bedspreads:		
6304.11.00	--Knitted or crocheted	5%	0
6304.19	--Other:		
6304.19.10	---Bedspreads, as follows: (a) alhambra; (b) dimity; (c) grecian; (d) honeycomb; (e) marcella	5%	0
6304.19.90	---Other	5%	0
6304.9	-Other:		
6304.91.00	--Knitted or crocheted	5%	0
6304.92.00	--Not knitted or crocheted, of cotton	5%	0
6304.93.00	--Not knitted or crocheted, of synthetic fibres	5%	0
6304.99.00	--Not knitted or crocheted, of other textile materials	5%	0
6305	SACKS AND BAGS, OF A KIND USED FOR THE PACKING OF GOODS:		
6305.10.00	-Of jute or of other textile bast fibres of 5303	0%	0
6305.20.00	-Of cotton	0%	0
6305.3	-Of man-made textile materials:		
6305.32.00	--Flexible intermediate bulk containers	5%	0
6305.33	--Other, of polyethylene or polypropylene strip or the like:		
6305.33.10	---Woolpacks	0%	0
6305.33.90	---Other	5%	0
6305.39	--Other:		
6305.39.10	---Woolpacks	0%	0
6305.39.90	---Other	5%	0
6305.90.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0%	0
6306	TARPAULINS, AWNINGS AND SUNBLINDS; TENTS; SAILS FOR BOATS, SAILBOARDS OR LANDCRAFT; CAMPING GOODS:		
6306.1	-Tarpaulins, awnings and sunblinds:		
6306.12.00	--Of synthetic fibres	5%	0
6306.1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5%	0
6306.2	-Tents:		
6306.22.00	--Of synthetic fibres	5%	0
6306.29.00	--Of other textile materials	5%	0
6306.30.00	-Sails	5%	0
6306.40.00	-Pneumatic mattresses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6306.90.00	-Other	5%	0
6307	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6307.10	-Floor-cloths, dish-cloths, dusters and similar cleaning cloths:		
6307.10.10	---Knitted or crocheted	5%	0
6307.10.20	---Articles of felt	5%	0
6307.10.30	---Nonwovens	5%	0
6307.10.90	---Other	5%	0
6307.20.00	-Life-jackets and life-belts	5%	0
6307.90	-Other:		
6307.90.10	---Knitted or crocheted articles, as follows: (a) consisting of textile materials combined with rubber threads; (b)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with rubber or made with textile thread impregnated, coated or covered with rubber	5%	0
6307.90.2	---Knitted or crocheted articles, NSA:		
6307.90.21	----Ornamental trimmings in the piece	5%	0
6307.90.29	----Other	5%	0
6307.90.30	---Articles of felt	5%	0
6307.90.40	---Nonwovens	5%	0
6307.90.9	---Other:		
6307.90.91	----Flags	5%	0
6307.90.99	----Other	5%	0
6308.00.00	SETS CONSISTING OF WOVEN FABRIC AND YARN, WHETHER OR NOT WITH ACCESSORIES, FOR MAKING UP INTO RUGS, TAPESTRIES, EMBROIDERED TABLE CLOTHS OR SERVIETTES, OR SIMILAR TEXTILE ARTICLES, PUT UP IN PACKINGS FOR RETAIL SALE	0%	0
6309.00.00	WORN CLOTHING AND OTHER WORN ARTICLES	0%	0
6310	USED OR NEW RAGS, SCRAP TWINE, CORDAGE, ROPE AND CABLES AND WORN OUT ARTICLES OF TWINE, CORDAGE, ROPE OR CABLES, OF TEXTILE MATERIALS:		
6310.10.00	-Sorted	0%	0
6310.90.00	-Other	0%	0
64	FOOTWEAR, GAITERS AND THE LIKE; PARTS OF SUCH ARTICLES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6401	WATERPROOF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RUBBER OR OF PLASTICS, THE UPPERS OF WHICH ARE NEITHER FIXED TO THE SOLE NOR ASSEMBLED BY STITCHING, RIVETING, NAILING, SCREWING, PLUGGING OR SIMILAR PROCESSES:		
6401.10.00	-Footwear incorporating a protective metal toe-cap	5%	5
6401.9	-Other footwear:		
6401.92	--Covering the ankle but not covering the knee:		
6401.92.10	---Footwear of a kind used solely or principally in conjunction with diving dress or wetsuits; ski-boots, cross-country ski footwear and snowboard boots	0%	0
6401.92.90	---Other	5%	5
6401.99	--Other:		
6401.99.10	---Footwear, not covering the knee, of a kind used solely or principally in conjunction with diving dress or wetsuits; ski-boots, cross-country ski footwear and snowboard boots, not covering the knee	0%	0
6401.99.20	---Footwear covering the knee	5%	5
6401.99.90	---Other	5%	5
6402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RUBBER OR PLASTICS:		
6402.1	-Sports footwear:		
6402.12.00	--Ski-boots, cross-country ski footwear and snowboard boots	0%	0
6402.19.00	--Other	5%	5
6402.20.00	-Footwear with upper straps or thongs assembled to the sole by means of plugs	5%	5
6402.9	-Other footwear:		
6402.91	--Covering the ankle:		
6402.91.10	---Footwear of a kind used solely or principally in conjunction with diving dress or wetsuits (other than footwear incorporating a protective metal toe-cap)	0%	0
6402.91.90	---Other	5%	5
6402.99	--Other:		
6402.99.10	---Footwear of a kind used solely or principally in conjunction with diving dress or wetsuits (other than footwear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incorporating a protective metal toe-cap)		
6402.99.90	---Other	5%	5
6403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PLASTICS, LEATHER OR COMPOSITION LEATHER AND UPPERS OF LEATHER:		
6403.1	-Sports footwear:		
6403.12.00	--Ski-boots, cross-country ski footwear and snowboard boots	0%	0
6403.19.00	--Other	5%	5
6403.20.00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leather, and uppers which consist of leather straps across the instep and around the big toe	0%	0
6403.40.00	-Other footwear, incorporating a protective metal toe-cap	5%	5
6403.5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leather:		
6403.51.00	--Covering the ankle	5%	5
6403.59.00	--Other	5%	5
6403.9	-Other footwear:		
6403.91.00	--Covering the ankle	5%	5
6403.99.00	--Other	5%	5
6404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PLASTICS, LEATHER OR COMPOSITION LEATHER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6404.1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or plastics:		
6404.11	--Sports footwear; tennis shoes, basketball shoes, gym shoes, training shoes and the like:		
6404.11.10	---Ski-boots, cross-country ski footwear and snowboard boots	0%	0
6404.11.90	---Other	5%	5
6404.19	--Other:		
6404.19.10	---Footwear of a kind used solely or principally in conjunction with diving dress or wetsuits	0%	0
6404.19.90	---Other	5%	5
6404.20.00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leather or composition leather	5%	5
6405	OTHER FOOTWEAR:		
6405.10.00	-With uppers of leather or composition leather	5%	5
6405.20.00	-With uppers of textile materials	5%	5
6405.90	-Other:		
6405.90.10	---Ski-boots, cross-country ski footwear and snowboard boots	0%	0
6405.90.90	---Other	5%	5
6406	PARTS OF FOOTWEAR (INCLUDING UPPERS WHETHER OR NOT ATTACHED TO SOLES OTHER THAN OUTER SOLES); REMOVABLE IN-SOLES, HEEL CUSHIONS AND SIMILAR ARTICLES; GAITERS, LEGGINGS AND SIMILAR ARTICLES, AND PARTS THEREOF:		
6406.10	-Uppers and parts thereof, other than stiffeners:		
6406.10.10	---Parts, of metal	5%	0
6406.10.90	---Other	5%	0
6406.20.00	-Outer soles and heels, of rubber or plastics	5%	0
6406.90	-Other:		
6406.90.10	---Gaiters, leggings and similar articles, and parts thereof	0%	0
6406.90.90	---Other	5%	0
65	HEADGEAR AND PARTS THEREOF		
6501.00.00	HAT-FORMS, HAT BODIES AND HOODS OF FELT, NEITHER BLOCKED TO SHAPE NOR WITH MADE BRIMS; PLATEAUX AND MANCHONS (INCLUDING SLIT MANCHONS), OF FELT	5%	0
6502.00.00	HAT-SHAPES, PLAITED OR MADE BY ASSEMBLING STRIPS OF ANY MATERIAL, NEITHER BLOCKED TO SHAPE, NOR WITH MADE BRIMS, NOR LINED, NOR TRIMMED	0%	0
6504.00.00	HATS AND OTHER HEADGEAR, PLAITED OR MADE BY ASSEMBLING STRIPS OF ANY MATERIAL, WHETHER OR NOT LINED OR TRIMMED	0%	0
6505	HATS AND OTHER HEADGEAR, KNITTED OR CROCHETED, OR MADE UP FROM LACE, FELT OR OTHER TEXTILE FABRIC, IN THE PIECE (BUT NOT IN STRIPS), WHETHER OR NOT LINED OR TRIMMED; HAIR-NETS OF ANY MATERIAL, WHETHER OR NOT LINED OR TRIMMED:		
6505.00.10	---Of nonwovens, other than hair-nets	5%	0
6505.00.90	---Other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6506	OTHER HEADGEAR, WHETHER OR NOT LINED OR TRIMMED:		
6506.10.00	-Safety headgear	0%	0
6506.9	-Other:		
6506.91	--Of rubber or of plastics:		
6506.91.10	---Of a kind used solely or principally with diving dress or wetsuits	5%	0
6506.91.90	---Other	0%	0
6506.99	--Of other materials:		
6506.99.10	---Of nonwovens, sheet paper or paperboard	5%	0
6506.99.90	---Other	0%	0
6507.00.00	HEAD-BANDS, LININGS, COVERS, HAT FOUNDATIONS, HAT FRAMES, PEAKS AND CHINSTRAPS, FOR HEADGEAR	0%	0
66	UMBRELLAS, SUN UMBRELLAS, WALKING-STICKS, SEAT-STICKS, WHIPS, RIDING-CROPS AND PARTS THEREOF		
6601	UMBRELLAS AND SUN UMBRELLAS (INCLUDING WALKING-STICK UMBRELLAS, GARDEN UMBRELLAS AND SIMILAR UMBRELLAS):		
6601.10.00	-Garden or similar umbrellas	5%	0
6601.9	-Other:		
6601.91.00	--Having a telescopic shaft	0%	0
6601.99.00	--Other	5%	0
6602.00.00	WALKING-STICKS, SEAT-STICKS, WHIPS, RIDING-CROPS, AND THE LIKE	0%	0
6603	PARTS, TRIMMINGS AND ACCESSORIES OF ARTICLES OF 6601 OR 6602.00.00:		
6603.20.00	-Umbrella frames, including frames mounted on shafts (sticks)	0%	0
6603.90.00	-Other	0%	0
67	PREPARED FEATHERS AND DOWN AND ARTICLES MADE OF FEATHERS OR OF DOWN; ARTIFICIAL FLOWERS; ARTICLES OF HUMAN HAIR		
6701.00.00	SKINS AND OTHER PARTS OF BIRDS WITH THEIR FEATHERS OR DOWN, FEATHERS, PARTS OF FEATHERS, DOWN AND ARTICLES THEREOF (OTHER THAN GOODS OF 0505 AND WORKED QUILLS AND SCAPES)	0%	0
6702	ARTIFICIAL FLOWERS, FOLIAGE AND FRUIT AND PARTS THEREOF; ARTICLES MADE OF ARTIFICIAL FLOWERS, FOLIAGE OR FRUIT:		
6702.10.00	-Of plastics	0%	0
6702.90.00	-Of other materials	0%	0
6703.00.00	HUMAN HAIR, DRESSED, THINNED, BLEACHED OR OTHERWISE WORKED; WOOL OR OTHER ANIMAL HAIR OR OTHER TEXTILE MATERIALS, PREPARED FOR USE IN MAKING WIGS OR THE LIKE	0%	0
6704	WIGS, FALSE BEARDS, EYEBROWS AND EYELASHES, SWITCHES AND THE LIKE, OF HUMAN OR ANIMAL HAIR OR OF TEXTILE MATERIALS; ARTICLES OF HUMAN HAIR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6704.1	-Of synthetic textile materials:		
6704.11.00	--Complete wigs	0%	0
6704.19.00	--Other	0%	0
6704.20.00	-Of human hair	0%	0
6704.90.00	-Of other materials	0%	0
68	ARTICLES OF STONE, PLASTER, CEMENT, ASBESTOS, MICA OR SIMILAR MATERIALS		
6801.00.00	SETTS, CURBSTONES AND FLAGSTONES, OF NATURAL STONE (EXCEPT SLATE)	0%	0
6802	WORKED MONUMENTAL OR BUILDING STONE (EXCEPT SLATE) AND ARTICLES THEREOF, OTHER THAN GOODS OF 6801.00.00; MOSAIC CUBES AND THE LIKE, OF NATURAL STONE (INCLUDING SLATE), WHETHER OR NOT ON A BACKING; ARTIFICIALLY COLOURED GRANULES. CHIPPINGS AND POWDER, OF NATURAL STONE (INCLUDING SLATE):		
6802.10.00	-Tiles, cubes and similar articles, whether or not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the largest surface area of which is capable of being enclosed in a square the side of which is less than 7 cm; artificially coloured granules, chippings and powder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6802.2	-Other monumental or building stone and articles thereof, simply cut or sawn, with a flat or even surface:		
6802.21.00	--Marble, travertine and alabaster	5%	0
6802.23.00	--Granite	5%	0
6802.29.00	--Other stone	0%	0
6802.9	-Other:		
6802.91.00	--Marble, travertine and alabaster	5%	0
6802.92.00	--Other calcareous stone	0%	0
6802.93.00	--Granite	5%	0
6802.99.00	--Other stone	5%	0
6803.00.00	WORKED SLATE AND ARTICLES OF SLATE OR OF AGGLOMERATED SLATE	5%	0
6804	MILLSTONES, GRINDSTONES, GRINDING WHEELS AND THE LIKE, WITHOUT FRAMEWORKS, FOR GRINDING, SHARPENING, POLISHING, TRUEING OR CUTTING, HAND SHARPENING OR POLISHING STONES, AND PARTS THEREOF, OF NATURAL STONE, OF AGGLOMERATED NATURAL OR ARTIFICIAL ABRASIVES, OR OF CERAMICS, WITH OR WITHOUT PARTS OF OTHER MATERIALS:		
6804.10.00	-Millstones and grindstones for milling, grinding or pulping	0%	0
6804.2	-Other millstones, grindstones, grinding wheels and the like:		
6804.21.00	--Of agglomerated synthetic or natural diamond	5%	0
6804.22.00	--Of other agglomerated abrasives or of ceramics	5%	0
6804.23.00	--Of natural stone	0%	0
6804.30.00	-Hand sharpening or polishing stones	5%	0
6805	NATURAL OR ARTIFICIAL ABRASIVE POWDER OR GRAIN, ON A BASE OF TEXTILE MATERIAL, OF PAPER, OF PAPERBOARD OR OF OTHER MATERIALS, WHETHER OR NOT CUT TO SHAPE OR SEWN OR OTHERWISE MADE UP:		
6805.10.00	-On a base of woven textile fabric only	5%	0
6805.20.00	-On a base of paper or paperboard only	5%	0
6805.30.00	-On a base of other materials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6806	SLAG WOOL, ROCK WOOL AND SIMILAR MINERAL WOOLS; EXFOLIATED VERMICULITE, EXPANDED CLAYS, FOAMED SLAG AND SIMILAR EXPANDED MINERAL MATERIALS; MIXTURES AND ARTICLES OF HEAT-INSULATING, SOUND-INSULATING OR SOUND-ABSORBING MINERAL MATERIALS, OTHER THAN THOSE OF 6811 OR 6812 OR OF CHAPTER 69:		
6806.10.00	-Slag wool, rock wool and similar mineral wools (including intermixtures thereof), in bulk, sheets or rolls	5%	0
6806.20.00	-Exfoliated vermiculite, expanded clays, foamed slag and similar expanded mineral materials (including intermixtures thereof)	0%	0
6806.90	-Other:		
6806.90.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6806.90.90	---Other	5%	0
6807	ARTICLES OF ASPHALT OR OF SIMILAR MATERIAL (FOR EXAMPLE, PETROLEUM BITUMEN OR COAL TAR PITCH):		
6807.10.00	-In rolls	5%	0
6807.90.00	-Other	0%	0
6808.00.00	PANELS, BOARDS, TILES, BLOCKS AND SIMILAR ARTICLES OF VEGETABLE FIBRE, OF STRAW OR OF SHAVINGS, CHIPS, PARTICLES, SAWDUST OR OTHER WASTE, OF WOOD, AGGLOMERATED WITH CEMENT, PLASTER OR OTHER MINERAL BINDERS	5%	0
6809	ARTICLES OF PLASTER OR OF COMPOSITIONS BASED ON PLASTER:		
6809.1	-Boards, sheets, panels, tiles and similar articles, not ornamented:		
6809.11.00	--Faced or reinforced with paper or paperboard only	5%	0
6809.19.00	--Other	5%	0
6809.90.00	-Other articles	5%	0
6810	ARTICLES OF CEMENT, OF CONCRETE OR OF ARTIFICIAL STONE, WHETHER OR NOT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REINFORCED:		
6810.1	-Tiles, flagstones, bricks and similar articles:		
6810.11.00	--Building blocks and bricks	5%	0
6810.19.00	--Other	5%	0
6810.9	-Other articles:		
6810.91.00	--Prefabricated structural components for building or civil engineering	5%	0
6810.99.00	--Other	5%	0
6811	ARTICLES OF ASBESTOS-CEMENT, OF CELLULOSE FIBRE-CEMENT OR THE LIKE:		
6811.40.00	-Containing asbestos	5%	0
6811.8	-Not containing asbestos:		
6811.81.00	--Corrugated sheets	5%	0
6811.82.00	--Other sheets, panels, tiles and similar articles	5%	0
6811.89.00	--Other articles	5%	0
6812	FABRICATED ASBESTOS FIBRES; MIXTURES WITH A BASIS OF ASBESTOS OR WITH A BASIS OF ASBESTOS AND MAGNESIUM CARBONATE; ARTICLES OF SUCH MIXTURES OR OF ASBESTOS (FOR EXAMPLE, THREAD, WOVEN FABRIC, CLOTHING, HEADGEAR, FOOTWEAR, GASKETS), WHETHER OR NOT REINFORCED OTHER THAN GOODS OF 6811 OR 6813:		
6812.80	-Of crocidolite:		
6812.80.10	---Goods, as follows: (a) clothing, clothing accessories, footwear and headwear; (b) compressed fibre jointing, in sheets or rolls; (c) cords and string, whether or not plaited; (d) fabricated crocidolite fibres; mixtures with a basis of crocidolite and magnesium carbonate; (e) paper, millboard and felt; (f) woven or knitted fabric; (g) yarn and thread	0%	0
6812.80.2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6812.80.90	---Other	0%	0
6812.9	-Other:		
6812.91.00	--Clothing, clothing accessories, footwear and headgear	0%	0
6812.92.00	--Paper, millboard and felt	0%	0
6812.93.00	--Compressed asbestos fibre jointing, in sheets or rolls	0%	0
6812.99	--Other:		
6812.99.10	---Goods, as follows: (a) fabricated asbestos fibres; mixtures with a basis of asbestos or with a basis of asbestos and magnesium carbonate; (b) yarn and thread; (c) cords and string, whether or not plaited; (d) woven or knitted fabric	0%	0
6812.99.2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6812.99.90	---Other	0%	0
6813	FRICTION MATERIAL AND ARTICLES THEREOF (FOR EXAMPLE, SHEETS, ROLLS, STRIPS, SEGMENTS, DISCS, WASHERS, PADS), NOT MOUNTED, FOR BRAKES, FOR CLUTCHES OR THE LIKE, WITH A BASIS OF ASBESTOS, OF OTHER MINERAL SUBSTANCES OR OF CELLULOSE, WHETHER OR NOT COMBINED WITH TEXTILE OR OTHER MATERIALS:		
6813.20	-Containing asbestos:		
6813.20.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6813.20.90	---Other	5%	0
6813.8	-Not containing asbestos:		
6813.81	--Brake linings and pads:		
6813.81.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6813.81.90	---Other	5%	0
6813.89	--Other:		
6813.89.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6813.89.90	---Other	5%	0
6814	WORKED MICA AND ARTICLES OF MICA, INCLUDING AGGLOMERATED OR RECONSTITUTED MICA, WHETHER OR NOT ON A SUPPORT OF PAPER, PAPERBOARD OR OTHER MATERIALS:		
6814.10.00	-Plates, sheets and strips of agglomerated or reconstituted mica, whether or not on a support	5%	0
6814.90.00	-Other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6815	ARTICLES OF STONE OR OF OTHER MINERAL SUBSTANCES (INCLUDING CARBON FIBRES, ARTICLES OF CARBON FIBRES AND ARTICLES OF PEAT),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6815.10.00	-Non-electrical articles of graphite or other carbon	5%	0
6815.20.00	-Articles of peat	0%	0
6815.9	-Other articles:		
6815.91.00	--Containing magnesite, dolomite or chromite	5%	0
6815.99.00	--Other	5%	0
69	CERAMIC PRODUCTS		
6901.00.00	BRICKS, BLOCKS, TILES AND OTHER CERAMIC GOODS OF SILICEOUS FOSSIL MEALS (FOR EXAMPLE, KIESELGUHR, TRIPOLITE OR DIATOMITE) OR OF SIMILAR SILICEOUS EARTHS	5%	0
6902	REFRACTORY BRICKS, BLOCKS, TILES AND SIMILAR REFRACTORY CERAMIC CONSTRUCTIONAL GOODS, OTHER THAN THOSE OF SILICEOUS FOSSIL MEALS OR SIMILAR SILICEOUS EARTHS:		
6902.10.00	-Containing by weight, singly or together, more than 50% of the elements Mg, Ca or Cr, expressed as MgO, CaO or Cr2O3	5%	0
6902.20.00	-Containing by weight more than 50% of alumina (Al2O3), of silica (SiO2) or of a mixture or compound of these products	5%	0
6902.90.00	-Other	5%	0
6903	OTHER REFRACTORY CERAMIC GOODS (FOR EXAMPLE, RETORTS, CRUCIBLES, MUFFLES, NOZZLES, PLUGS, SUPPORTS, CUPELS, TUBES, PIPES, SHEATHS AND RODS), OTHER THAN THOSE OF SILICEOUS FOSSIL MEALS OR OF SIMILAR SILICEOUS EARTHS:		
6903.10.00	-Containing by weight more than 50% of graphite or other carbon or of a mixture of these products	5%	0
6903.20.00	-Containing by weight more than 50% of alumina (Al2O3) or of a mixture or compound of alumina and of silica (SiO2)	5%	0
6903.90.00	-Other	5%	0
6904	CERAMIC BUILDING BRICKS, FLOORING BLOCKS, SUPPORT OR FILLER TILES AND THE LIKE:		
6904.10.00	-Building bricks	0%	0
6904.90.00	-Other	0%	0
6905	ROOFING TILES, CHIMNEY-POTS, COWLS, CHIMNEY LINERS, ARCHITECTURAL ORNAMENTS AND OTHER CERAMIC CONSTRUCTIONAL GOODS:		
6905.10.00	-Roofing tiles	5%	0
6905.90.00	-Other	5%	0
6906.00.00	CERAMIC PIPES, CONDUITS, GUTTERING AND PIPE FITTINGS	5%	0
6907	UNGLAZED CERAMIC FLAGS AND PAVING, HEARTH OR WALL TILES; UNGLAZED CERAMIC MOSAIC CUBES AND THE LIKE, WHETHER OR NOT ON A BACKING:		
6907.10.00	-Tiles, cubes and similar articles, whether or not rectangular, the largest surface area of which is capable of being enclosed in a square the side of which is less than 7 cm	0%	0
6907.90.00	-Other	5%	0
6908	GLAZED CERAMIC FLAGS AND PAVING, HEARTH OR WALL TILES; GLAZED CERAMIC MOSAIC CUBES AND THE LIKE, WHETHER OR NOT ON A BACKING:		
6908.10.00	-Tiles, cubes and similar articles, whether or not rectangular, the largest surface area of which is capable of being enclosed in a square the side of which is less than 7 cm	0%	0
6908.90.00	-Other	5%	0
6909	CERAMIC WARES FOR LABORATORY, CHEMICAL OR OTHER TECHNICAL USES; CERAMIC TROUGHS, TUBS AND SIMILAR RECEPTACLES OF A KIND USED IN AGRICULTURE; CERAMIC POTS, JARS AND SIMILAR ARTICLES OF A KIND USED FOR THE CONVEYANCE OR PACKING OF GOODS:		
6909.1	-Ceramic wares for laboratory, chemical or other technical uses: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6909.11.00	--Of porcelain or china	5%	0
6909.12.00	--Articles having a hardness equivalent to 9 or more on the Mohs scale	5%	0
6909.19.00	--Other	5%	0
6909.90.00	-Other	5%	0
6910	CERAMIC SINKS, WASH BASINS, WASH BASIN PEDESTALS, BATHS, BIDETS, WATER CLOSET PANS, FLUSHING CISTERNS, URINALS AND SIMILAR SANITARY FIXTURES:		
6910.10.00	-Of porcelain or china	5%	0
6910.90.00	-Other	5%	0
6911	TABLEWARE, KITCHENWARE, OTHER HOUSEHOLD ARTICLES AND TOILET ARTICLES, OF PORCELAIN OR CHINA:		
6911.10.00	-Tableware and kitchenware	5%	0
6911.90.00	-Other	5%	0
6912.00.00	CERAMIC TABLEWARE, KITCHENWARE, OTHER HOUSEHOLD ARTICLES AND TOILET ARTICLES, OTHER THAN OF PORCELAIN OR CHINA	5%	0
6913	STATUETTES AND OTHER ORNAMENTAL CERAMIC ARTICLES:		
6913.10.00	-Of porcelain or china	5%	0
6913.90.00	-Other	5%	0
6914	OTHER CERAMIC ARTICLES:		
6914.10.00	-Of porcelain or china	5%	0
6914.90.00	-Other	5%	0
70	GLASS AND GLASSWARE		
7001.00.00	CULLET AND OTHER WASTE AND SCRAP OF GLASS; GLASS IN THE MASS	0%	0
7002	GLASS IN BALLS (OTHER THAN MICROSPHERES OF 7018), RODS OR TUBES, UNWORKED:		
7002.10.00	-Balls	0%	0
7002.20.00	-Rods	0%	0
7002.3	-Tubes:		
7002.31.00	--Of fused quartz or other fused silica	0%	0
7002.32.00	--Of other glass having a linear coefficient of expansion not exceeding 5 x 10-6 per Kelvin within a temperature range of 0 oC to 300 oC	0%	0
7002.39.00	--Other	0%	0
7003	CAST GLASS AND ROLLED GLASS, IN SHEETS OR PROFILES, WHETHER OR NOT HAVING AN ABSORBENT, REFLECTING OR NON-REFLECTING LAYER, BUT NOT OTHERWISE WORKED:		
7003.1	-Non-wired sheets:		
7003.12.00	--Coloured throughout the mass (body tinted), opacified, flashed or having an absorbent, reflecting or non-reflecting layer	5%	0
7003.19.00	--Other	5%	0
7003.20.00	-Wired sheets	5%	0
7003.30.00	-Profiles	5%	0
7004	DRAWN GLASS AND BLOWN GLASS, IN SHEETS, WHETHER OR NOT HAVING AN ABSORBENT, REFLECTING OR NON-REFLECTING LAYER, BUT NOT OTHERWISE WORKED:		
7004.20.00	-Glass, coloured throughout the mass (body tinted), opacified, flashed or having an absorbent, reflecting or non-reflecting layer	0%	0
7004.90.00	-Other glass	0%	0
7005	FLOAT GLASS AND SURFACE GROUND OR POLISHED GLASS, IN SHEETS, WHETHER OR NOT HAVING AN ABSORBENT, REFLECTING OR NON-REFLECTING LAYER, BUT NOT OTHERWISE WORKED:		
7005.10.00	-Non-wired glass, having an absorbent, reflecting or non-reflecting layer	5%	0
7005.2	-Other non-wired glass:		
7005.21.00	--Coloured throughout the mass (body tinted), opacified, flashed or merely surface ground	5%	0
7005.29.00	--Other	5%	0
7005.30.00	-Wired glass	0%	0
7006.00.00	GLASS OF 7003, 7004 OR 7005, BENT, EDGE-WORKED, ENGRAVED, DRILLED, ENAMELLED OR OTHERWISE WORKED, BUT NOT FRAMED OR FITTED WITH OTHER MATERIALS	5%	0
7007	SAFETY GLASS, CONSISTING OF TOUGHENED (TEMPERED) OR LAMINATED GLASS:		
7007.1	-Toughened (tempered) safety glass: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7007.11	--Of size and shape suitable for incorporation in vehicles, aircraft, spacecraft or vessels:		
7007.11.1	---For motor vehicles:		
7007.11.11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7007.11.19	----Other	5%	0
7007.11.90	---Other	5%	0
7007.19.00	--Other	5%	0
7007.2	-Laminated safety glass:		
7007.21	--Of size and shape suitable for incorporation in vehicles, aircraft, spacecraft or vessels:		
7007.21.1	---For motor vehicles:		
7007.21.11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7007.21.19	----Other	5%	0
7007.21.90	---Other	5%	0
7007.29.00	--Other	5%	0
7008.00.00	MULTIPLE-WALLED INSULATING UNITS OF GLASS	5%	0
7009	GLASS MIRRORS, WHETHER OR NOT FRAMED, INCLUDING REAR-VIEW MIRRORS:		
7009.10	-Rear-view mirrors for vehicles:		
7009.10.10	---Of a kind used on vehicles of 8702, 8703 or 8704	5%	5
7009.10.90	---Other	5%	0
7009.9	-Other:		
7009.91.00	--Unframed	5%	0
7009.92.00	--Framed	5%	0
7010	CARBOYS, BOTTLES, FLASKS, JARS, POTS, PHIALS, AMPOULES AND OTHER CONTAINERS, OF GLASS, OF A KIND USED FOR THE CONVEYANCE OR PACKING OF GOODS; PRESERVING JARS OF GLASS; STOPPERS, LIDS AND OTHER CLOSURES, OF GLASS:		
7010.10.00	-Ampoules	5%	0
7010.20.00	-Stoppers, lids and other closures	0%	0
7010.9	-Other:		
7010.90.10	---Phials, not exceeding 0.15 L	5%	0
7010.90.90	---Other	0%	0
7011	GLASS ENVELOPES (INCLUDING BULBS AND TUBES), OPEN, AND GLASS PARTS THEREOF, WITHOUT FITTINGS, FOR ELECTRIC LAMPS, CATHODE-RAY TUBES OR THE LIKE:		
7011.10.00	-For electric lighting	0%	0
7011.20.00	-For cathode-ray tubes	0%	0
7011.90.00	-Other	0%	0
7013	GLASSWARE OF A KIND USED FOR TABLE, KITCHEN, TOILET, OFFICE, INDOOR DECORATION OR SIMILAR PURPOSES (OTHER THAN THAT OF 7010 OR 7018):		
7013.10.00	-Of glass-ceramics	0%	0
7013.2	-Stemware drinking glasses, other than of glass-ceramics:		
7013.22.00	--Of lead crystal	0%	0
7013.28.00	--Other	5%	0
7013.3	-Other drinking glasses, other than of glass-ceramics:		
7013.33.00	--Of lead crystal	0%	0
7013.37.00	--Other	5%	0
7013.4	-Glassware of a kind used for table (other than drinking glasses) or kitchen purposes, other than of glass-ceramics:		
7013.41.00	--Of lead crystal	0%	0
7013.42.00	--Of glass having a linear coefficient of expansion not exceeding 5 x 10-6 per Kelvin within a temperature range of 0 oC to 300 oC	5%	0
7013.49.00	--Other	5%	0
7013.9	-Other glassware:		
7013.91.00	--Of lead crystal	0%	0
7013.99	--Other:		
7013.99.10	---Goods, as follows: (a) figures of a kind commonly used as ornaments in the household; (b) statuary figures	0%	0
7013.99.90	---Other	5%	0
7014	SIGNALLING GLASSWARE AND OPTICAL ELEMENTS OF GLASS (OTHER THAN THOSE OF 7015), NOT OPTICALLY WORKED:		
7014.00.20	---Reflectors and refractors for lighting purposes of a kind used with: (a) vehicles of 8701.20.00, 8702, 8703, 8704 or 8705; (b) trailers for articulated vehicles of 8716	5%	5
7014.00.90	---Other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7015	CLOCK OR WATCH GLASSES AND SIMILAR GLASSES, GLASSES FOR NON-CORRECTIVE OR CORRECTIVE SPECTACLES, CURVED, BENT, HOLLOWED OR THE LIKE, NOT OPTICALLY WORKED; HOLLOW GLASS SPHERES AND THEIR SEGMENTS, FOR THE MANUFACTURE OF SUCH GLASSES:		
7015.10.00	-Glasses for corrective spectacles	0%	0
7015.90.00	-Other	0%	0
7016	PAVING BLOCKS, SLABS, BRICKS, SQUARES, TILES AND OTHER ARTICLES OF PRESSED OR MOULDED GLASS, WHETHER OR NOT WIRED, OF A KIND USED FOR BUILDING OR CONSTRUCTION PURPOSES; GLASS CUBES AND OTHER GLASS SMALLWARES, WHETHER OR NOT ON A BACKING, FOR MOSAICS OR SIMILAR DECORATIVE PURPOSES; LEADED LIGHTS AND THE LIKE; MULTICELLULAR OR FOAM GLASS IN BLOCKS, PANELS, PLATES, SHELLES OR SIMILAR FORMS:		
7016.10.00	-Glass cubes and other glass smallwares, whether or not on a backing, for mosaics or similar decorative purposes	0%	0
7016.90.00	-Other	0%	0
7017	LABORATORY, HYGIENIC OR PHARMACEUTICAL GLASSWARE, WHETHER OR NOT GRADUATED OR CALIBRATED:		
7017.10.00	-Of fused quartz or other fused silica	0%	0
7017.20.00	-Of other glass having a linear coefficient of expansion not exceeding 5 x 10o6 per Kelvin within a temperature range of 0 oC to 300 oC	5%	0
7017.90.00	-Other	5%	0
7018	GLASS BEADS, IMITATION PEARLS, IMITATION PRECIOUS OR SEMI-PRECIOUS STONES AND SIMILAR GLASS SMALLWARES, AND ARTICLES THEREOF OTHER THAN IMITATION JEWELLERY; GLASS EYES OTHER THAN PROSTHETIC ARTICLES; STATUETTES AND OTHER ORNAMENTS OF LAMP-WORKED GLASS, OTHER THAN IMITATION JEWELLERY; GLASS MICROSPHERES NOT EXCEDDING 1mm IN DIAMETER:		
7018.10.00	-Glass beads, imitation pearls, imitation precious or semi-precious stones and similar glass smallwares	0%	0
7018.20.00	-Glass microspheres not exceeding 1 mm in diameter	5%	0
7018.90.00	-Other	0%	0
7019	GLASS FIBRES (INCLUDING GLASS WOOL) AND ARTICLES THEREOF (FOR EXAMPLE, YARN, WOVEN FABRICS):		
7019.1	-Slivers, rovings, yarn and chopped strands:		
7019.11.00	--Chopped strands, of a length of not more than 50 mm	5%	0
7019.12.00	--Rovings	5%	0
7019.19.00	--Other	5%	0
7019.3	-Thin sheets (voiles), webs, mats, mattresses, boards and similar nonwoven products:		
7019.31.00	--Mats	5%	0
7019.32.00	--Thin sheets (voiles)	0%	0
7019.39	--Other:		
7019.39.10	---Of glass wool	5%	0
7019.39.90	---Other	5%	0
7019.40.00	-Woven fabrics of rovings	5%	0
7019.5	-Other woven fabrics:		
7019.51.00	--Of a width not exceeding 30 cm	5%	0
7019.52.00	--Of a width exceeding 30 cm, plain weave, weighing less than 250 g/m2, of filaments measuring per single yarn not more than 136 tex	5%	0
7019.59.00	--Other	5%	0
7019.90	-Other:		
7019.90.10	---Glass wool and articles thereof	5%	0
7019.90.90	---Other	5%	0
7020	OTHER ARTICLES OF GLASS: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7020.00.10	---Optical fibre preforms, being goods of a kind used in the manufacture of optical fibres	5%	0
7020.00.90	---Other	0%	0
71	NATURAL OR CULTURED PEARLS, PRECIOUS OR SEMI-PRECIOUS STONES, PRECIOUS METALS, METALS CLAD WITH PRECIOUS METAL, AND ARTICLES THEREOF; IMITATION JEWELLERY; COIN		
7101	PEARLS, NATURAL OR CULTURED, WHETHER OR NOT WORKED OR GRADED BUT NOT STRUNG, MOUNTED OR SET; PEARLS, NATURAL OR CULTURED, TEMPORARILY STRUNG FOR CONVENIENCE OF TRANSPORT:		
7101.10.00	-Natural pearls	0%	0
7101.2	-Cultured pearls:		
7101.21.00	--Unworked	0%	0
7101.22.00	--Worked	0%	0
7102	DIAMONDS, WHETHER OR NOT WORKED, BUT NOT MOUNTED OR SET:		
7102.10.00	-Unsorted	0%	0
7102.2	-Industrial:		
7102.21.00	--Unworked or simply sawn, cleaved or bruted	0%	0
7102.29.00	--Other	0%	0
7102.3	-Non-industrial:		
7102.31.00	--Unworked or simply sawn, cleaved or bruted	0%	0
7102.39.00	--Other	0%	0
7103	PRECIOUS STONES (OTHER THAN DIAMONDS) AND SEMI-PRECIOUS STONES, WHETHER OR NOT WORKED OR GRADED BUT NOT STRUNG, MOUNTED OR SET; UNGRADED PRECIOUS STONES (OTHER THAN DIAMONDS) AND SEMI-PRECIOUS STONES, TEMPORARILY STRUNG FOR CONVENIENCE OF TRANSPORT:		
7103.10.00	-Unworked or simply sawn or roughly shaped	0%	0
7103.9	-Otherwise worked:		
7103.91.00	--Rubies, sapphires and emeralds	0%	0
7103.99.00	--Other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7104	SYNTHETIC OR RECONSTRUCTED PRECIOUS OR SEMI-PRECIOUS STONES, WHETHER OR NOT WORKED OR GRADED BUT NOT STRUNG, MOUNTED OR SET; UNGRADED SYNTHETIC OR RECONSTRUCTED PRECIOUS OR SEMI-PRECIOUS STONES, TEMPORARILY STRUNG FOR CONVENIENCE OF TRANSPORT:		
7104.10.00	-Piezo-electric quartz	0%	0
7104.20.00	-Other, unworked or simply sawn or roughly shaped	0%	0
7104.90.00	-Other	0%	0
7105	DUST AND POWDER OF NATURAL OR SYNTHETIC PRECIOUS OR SEMI-PRECIOUS STONES:		
7105.10.00	-Of diamonds	0%	0
7105.90.00	-Other	0%	0
7106	SILVER (INCLUDING SILVER PLATED WITH GOLD OR PLATINUM), UNWROUGHT OR IN SEMI-MANUFACTURED FORMS, OR IN POWDER FORM:		
7106.10.00	-Powder	0%	0
7106.9	-Other:		
7106.91.00	--Unwrought	0%	0
7106.92.00	--Semi-manufactured	0%	0
7107.00.00	BASE METALS CLAD WITH SILVER, NOT FURTHER WORKED THAN SEMI-MANUFACTURED	0%	0
7108	GOLD (INCLUDING GOLD PLATED WITH PLATINUM) UNWROUGHT OR IN SEMI-MANUFACTURED FORMS, OR IN POWDER FORM:		
7108.1	-Non-monetary:		
7108.11.00	--Powder	0%	0
7108.12.00	--Other unwrought forms	0%	0
7108.13.00	--Other semi-manufactured forms	0%	0
7108.20.00	-Monetary	0%	0
7109.00.00	BASE METALS OR SILVER, CLAD WITH GOLD, NOT FURTHER WORKED THAN SEMI-MANUFACTURED	0%	0
7110	PLATINUM, UNWROUGHT OR IN SEMI-MANUFACTURED FORMS, OR IN POWDER FORM: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7110.1	-Platinum:		
7110.11.00	--Unwrought or in powder form	0%	0
7110.19.00	--Other	0%	0
7110.2	-Palladium:		
7110.21.00	--Unwrought or in powder form	0%	0
7110.29.00	--Other	0%	0
7110.3	-Rhodium:		
7110.31.00	--Unwrought or in powder form	0%	0
7110.39.00	--Other	0%	0
7110.4	-Iridium, osmium and ruthenium:		
7110.41.00	--Unwrought or in powder form	0%	0
7110.49.00	--Other	0%	0
7111.00.00	BASE METALS, SILVER OR GOLD, CLAD WITH PLATINUM, NOT FURTHER WORKED THAN SEMI-MANUFACTURED	0%	0
7112	WASTE AND SCRAP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OTHER WASTE AND SCRAP CONTAINING PRECIOUS METAL OR PRECIOUS METAL COMPOUNDS, OF A KIND USED PRINCIPALLY FOR THE RECOVERY OF PRECIOUS METAL:		
7112.30.00	-Ash containing precious metal or precious metal compounds	0%	0
7112.9	-Other:		
7112.91.00	--Of gold, including metal clad with gold but excluding sweepings containing other precious metals	0%	0
7112.92.00	--Of platinum, including metal clad with platinum but excluding sweepings containing other precious metals	0%	0
7112.99.00	--Other	0%	0
7113	ARTICLES OF JEWELLERY AND PARTS THEREOF,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7113.1	-Of precious metal whether or not plated or clad with precious metal:		
7113.11.00	--Of silver, whether or not plated or clad with other precious metal	5%	0
7113.19.00	--Of other precious metal, whether or not plated or clad with precious metal	5%	0
7113.20.00	-Of base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5%	0
7114	ARTICLES OF GOLDSMITHS' OR SILVERSMITHS' WARES AND PARTS THEREOF,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7114.1	-Of precious metal whether or not plated or clad with precious metal:		
7114.11.00	--Of silver, whether or not plated or clad with other precious metal	5%	0
7114.19.00	--Of other precious metal, whether or not plated or clad with precious metal	5%	0
7114.20.00	-Of base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5%	0
7115	OTHER ARTICLES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7115.10.00	-Catalysts in the form of wire cloth or grill, of platinum	0%	0
7115.90.00	-Other	0%	0
7116	ARTICLES OF NATURAL OR CULTURED PEARLS, PRECIOUS OR SEMI-PRECIOUS STONES (NATURAL, SYNTHETIC OR RECONSTRUCTED):		
7116.10.00	-Of natural or cultured pearls	5%	0
7116.20.00	-Of precious or semi-precious stones (natural, synthetic or reconstructed)	5%	0
7117	IMITATION JEWELLERY:		
7117.1	-Of base metal, whether or not plated with precious metal:		
7117.11.00	--Cuff-links and studs	5%	0
7117.19.00	--Other	5%	0
7117.90.00	-Other	5%	0
7118	COIN:		
7118.10.00	-Coin (other than gold coin), not being legal tender	0%	0
7118.90.00	-Other	0%	0
72	IRON AND STEEL		
7201	PIG IRON AND SPIEGELEISEN IN PIGS, BLOCKS OR OTHER PRIMARY FORMS:		
7201.10.00	-Non-alloy pig iron containing by weight 0.5% or less of phosphorus	5%	0
7201.20.00	-Non-alloy pig iron containing by weight more than 0.5% of phosphorus	5%	0
7201.50.00	-Alloy pig iron; spiegeleisen	0%	0
7202	FERRO-ALLOYS:		
7202.1	-Ferro-manganese:		
7202.11.00	--Containing by weight more than 2%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of carbon		
7202.19.00	--Other	0%	0
7202.2	-Ferro-silicon:		
7202.21.00	--Containing by weight more than 55% of silicon	0%	0
7202.29.00	--Other	0%	0
7202.30.00	-Ferro-silico-manganese	0%	0
7202.4	-Ferro-chromium:		
7202.41.00	--Containing by weight more than 4% of carbon	0%	0
7202.49.00	--Other	0%	0
7202.50.00	-Ferro-silico-chromium	0%	0
7202.60.00	-Ferro-nickel	0%	0
7202.70.00	-Ferro-molybdenum	0%	0
7202.80.00	-Ferro-tungsten and ferro-silico-tungsten	0%	0
7202.9	-Other:		
7202.91.00	--Ferro-titanium and ferro-silico-titanium	0%	0
7202.92.00	--Ferro-vanadium	0%	0
7202.93.00	--Ferro-niobium	0%	0
7202.99.00	--Other	0%	0
7203	FERROUS PRODUCTS OBTAINED BY DIRECT REDUCTION OF IRON ORE AND OTHER SPONGY FERROUS PRODUCTS, IN LUMPS, PELLETS OR SIMILAR FORMS; IRON HAVING A MINIMUM PURITY BY WEIGHT OF 99.94%, IN LUMPS, PELLETS OR SIMILAR FORMS:		
7203.10.00	-Ferrous products obtained by direct reduction of iron ore	0%	0
7203.90.00	-Other	0%	0
7204	FERROUS WASTE AND SCRAP; REMELTING SCRAP INGOTS OF IRON OR STEEL:		
7204.10.00	-Waste and scrap of cast iron	0%	0
7204.2	-Waste and scrap of alloy steel:		
7204.21.00	--Of stainless steel	0%	0
7204.29.00	--Other	0%	0
7204.30.00	-Waste and scrap of tinned iron or steel	0%	0
7204.4	-Other waste and scrap:		
7204.41.00	--Turnings, shavings, chips, milling waste, sawdust, filings, trimmings and stampings, whether or not in bundles	0%	0
7204.49.00	--Other	0%	0
7204.50.00	-Remelting scrap ingots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7205	GRANULES AND POWDERS, OF PIG IRON, SPIEGELEISEN, IRON OR STEEL:		
7205.10.00	-Granules	0%	0
7205.2	-Powders:		
7205.21.00	--Of alloy steel	0%	0
7205.29.00	--Other	0%	0
7206	IRON AND NON-ALLOY STEEL IN INGOTS OR OTHER PRIMARY FORMS (EXCLUDING IRON OF 7203):		
7206.10.00	-Ingots	0%	0
7206.90.00	-Other	5%	0
7207	SEMI-FINISH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7207.1	-Containing by weight less than 0.25% of carbon:		
7207.11.00	--Of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cross-section, the width measuring less than twice the thickness	5%	0
7207.12.00	--Other, of rectangular (other than square) cross-section	5%	0
7207.19.00	--Other	5%	0
7207.20.00	-Containing by weight 0.25% or more of carbon	5%	0
7208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OF A WIDTH OF 600 MM OR MORE, HOT-ROLLED, NOT CLAD, PLATED OR COATED:		
7208.10.00	-In coils,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with patterns in relief	5%	0
7208.2	-Other, in coils,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pickled:		
7208.25.00	--Of a thickness of 4.75 mm or more	5%	0
7208.26.00	--Of a thickness of 3 mm or more but less than 4.75 mm	5%	0
7208.27.00	--Of a thickness of less than 3 mm	5%	0
7208.3	-Other, in coils,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7208.36.00	--Of a thickness exceeding 10 mm	5%	0
7208.37.00	--Of a thickness of 4.75 mm or more but not exceeding 10 mm	5%	0
7208.38.00	--Of a thickness of 3 mm or more but less than 4.75 mm	5%	0
7208.39.00	--Of a thickness of less than 3 mm	5%	0
7208.40.00	-Not in coils,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with patterns in relief	5%	0
7208.5	-Other, not in coils, not further worked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than hot-rolled:		
7208.51.00	--Of a thickness exceeding 10 mm	5%	0
7208.52.00	--Of a thickness of 4.75 mm or more but not exceeding 10 mm	5%	0
7208.53.00	--Of a thickness of 3 mm or more but less than 4.75 mm	5%	0
7208.54.00	--Of a thickness of less than 3 mm	5%	0
7208.90.00	-Other	5%	5
7209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OF A WIDTH OF 600 mm OR MORE, COLD-ROLLED (COLD-REDUCED), NOT CLAD, PLATED OR COATED:		
7209.1	-In coils, not further worked than cold-rolled (cold-reduced):		
7209.15.00	--Of a thickness of 3 mm or more	5%	5
7209.16.00	--Of a thickness exceeding 1 mm but less than 3 mm	5%	5
7209.17.00	--Of a thickness of 0.5 mm or more but not exceeding 1 mm	5%	5
7209.18.00	--Of a thickness of less than 0.5 mm	5%	5
7209.2	-Not in coils, not further worked than cold-rolled (cold-reduced):		
7209.25.00	--Of a thickness of 3 mm or more	5%	5
7209.26.00	--Of a thickness exceeding 1 mm but less than 3 mm	5%	5
7209.27.00	--Of a thickness of 0.5 mm or more but not exceeding 1 mm	5%	5
7209.28.00	--Of a thickness of less than 0.5 mm	5%	5
7209.90.00	-Other	5%	5
7210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OF A WIDTH OF 600 MM OR MORE, CLAD, PLATED OR COATED:		
7210.1	-Plated or coated with tin:		
7210.11.00	--Of a thickness of 0.5 mm or more	0%	0
7210.12.00	--Of a thickness of less than 0.5 mm	0%	0
7210.20.00	-Plated or coated with lead, including terne-plate	0%	0
7210.30.00	-Electrolytically plated or coated with zinc	5%	5
7210.4	-Otherwise plated or coated with zinc:		
7210.41.00	--Corrugated	5%	5
7210.49.00	--Other	5%	5
7210.50.00	-Plated or coated with chromium oxides or with chromium and chromium oxides	5%	5
7210.6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		
7210.61.00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zinc alloys	5%	5
7210.69.00	--Other	5%	5
7210.70.00	-Painted, varnished or coated with plastics	5%	5
7210.90.00	-Other	5%	5
7211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OF A WIDTH OF LESS THAN 600 mm, NOT CLAD, PLATED OR COATED:		
7211.1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7211.13.00	--Rolled on four faces or in a closed box pass, of a width exceeding 150 mm and a thickness of not less than 4 mm, not in coils and without patterns in relief	5%	0
7211.14.00	--Other, of a thickness of 4.75 mm or more	5%	0
7211.19.00	--Other	5%	0
7211.2	-Not further worked than cold-rolled (cold-reduced):		
7211.23.00	--Containing by weight less than 0.25% of carbon	5%	5
7211.29.00	--Other	5%	5
7211.90.00	-Other	5%	5
7212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OF A WIDTH OF LESS THAN 600 mm, CLAD, PLATED OR COATED:		
7212.10.00	-Plated or coated with tin	0%	0
7212.20.00	-Electrolytically plated or coated with zinc	5%	5
7212.30.00	-Otherwise plated or coated with zinc	5%	5
7212.40.00	-Painted, varnished or coated with plastics	5%	5
7212.50.00	-Otherwise plated or coated	5%	5
7212.60.00	-Clad	5%	5
7213	BARS AND RODS, HOT-ROLLED, IN IRREGULARLY WOUND COILS, OF IRON OR NON-ALLOY STEEL:		
7213.10.00	-Containing indentations, ribs, grooves or other deformations produced during the rolling process	5%	0
7213.20.00	-Other, of free-cutting steel	5%	0
7213.9	-Other:		
7213.91.00	--Of circular cross-section measuring less than 14 mm in diameter	5%	0
7213.99.00	--Other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7214	OTHER BARS AND RODS OF IRON OR NON-ALLOY STEEL, NOT FURTHER WORKED THAN FORGED, HOT-ROLLED, HOT-DRAWN OR HOT-EXTRUDED, BUT INCLUDING THOSE TWISTED AFTER ROLLING:		
7214.10.00	-Forged	5%	0
7214.20.00	-Containing indentations, ribs, grooves or other deformations produced during the rolling process or twisted after rolling	5%	0
7214.30.00	-Other, of free-cutting steel	5%	0
7214.9	-Other:		
7214.91.00	--Of rectangular (other than square) cross-section	5%	0
7214.99.00	--Other	5%	0
7215	OTHER BARS AND RODS OF IRON OR NON-ALLOY STEEL:		
7215.10	-Of free-cutting steel, not further worked than cold-formed or cold-finished:		
7215.10.10	---"Flattened circles" and "modified rectangles" as defined in Note 1(l) to Chapter 72	5%	0
7215.10.90	---Other	5%	0
7215.50	-Other, not further worked than cold-formed or cold-finished:		
7215.50.10	---"Flattened circles" and "modified rectangles" as defined in Note 1(l) to Chapter 72	5%	0
7215.50.90	---Other	5%	0
7215.90.00	-Other	5%	0
7216	ANGLES, SHAPES AND SECTIONS OF IRON OR NON-ALLOY STEEL:		
7216.10.00	-U, I or H sections,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hot-drawn or extruded, of a height of less than 80 mm	5%	0
7216.2	-L or T sections,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hot-drawn or extruded, of a height of less than 80 mm:		
7216.21.00	--L sections	5%	0
7216.22.00	--T sections	5%	0
7216.3	-U, I or H sections,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hot-drawn or extruded of a height of 80 mm or more:		
7216.31.00	--U sections	5%	0
7216.32.00	--I sections	5%	0
7216.33.00	--H sections	5%	0
7216.40.00	-L or T sections,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hot-drawn or extruded, of a height of 80 mm or more	5%	0
7216.50.00	-Other angles, shapes and sections,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hot-drawn or extruded	5%	0
7216.6	-Angles, shapes and sections, not further worked than cold-formed or cold-finished:		
7216.61.00	--Obtained from flat-rolled products	5%	0
7216.69.00	--Other	5%	0
7216.9	-Other:		
7216.91.00	--Cold-formed or cold-finished from flat-rolled products	5%	0
7216.99.00	--Other	5%	0
7217	WIRE OF IRON OR NON-ALLOY STEEL:		
7217.10.00	-Not plated or coated, whether or not polished	5%	0
7217.20.00	-Plated or coated with zinc	5%	0
7217.30.00	-Plated or coated with other base metals	5%	0
7217.90.00	-Other	5%	0
7218	STAINLESS STEEL IN INGOTS OR OTHER PRIMARY FORMS; SEMI-FINISH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7218.10.00	-Ingots and other primary forms	5%	0
7218.9	-Other:		
7218.91.00	--Of rectangular (other than square) cross-section	5%	0
7218.99.00	--Other	5%	0
7219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OF A WIDTH OF 600 mm OR MORE:		
7219.1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in coils:		
7219.11.00	--Of a thickness exceeding 10 mm	0%	0
7219.12.00	--Of a thickness of 4.75 mm or more but not exceeding 10mm	5%	0
7219.13.00	--Of a thickness of 3 mm or more but less than 4.75 mm	5%	0
7219.14.00	--Of a thickness of less than 3 mm	0%	0
7219.2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not in coils:		
7219.21.00	--Of a thickness exceeding 10 mm	5%	0
7219.22.00	--Of a thickness of 4.75 mm or more but not exceeding 10 mm	5%	0
7219.23.00	--Of a thickness of 3 mm or more but less than 4.75 mm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7219.24.00	--Of a thickness of less than 3 mm	5%	0
7219.3	-Not further worked than cold-rolled (cold-reduced):		
7219.31.00	--Of a thickness of 4.75 mm or more	5%	0
7219.32.00	--Of a thickness of 3 mm or more but less than 4.75 mm	5%	0
7219.33.00	--Of a thickness exceeding 1 mm but less than 3 mm	5%	0
7219.34.00	--Of a thickness of 0.5 mm or more but not exceeding 1 mm	5%	0
7219.35.00	--Of a thickness of less than 0.5 mm	5%	0
7219.90.00	-Other	5%	0
7220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OF A WIDTH OF LESS THAN 600 mm:		
7220.1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7220.11.00	--Of a thickness of 4.75 mm or more	5%	0
7220.12.00	--Of a thickness of less than 4.75 mm	5%	0
7220.20.00	-Not further worked than cold-rolled (cold-reduced)	5%	0
7220.90.00	-Other	5%	0
7221.00.00	BARS AND RODS, HOT-ROLLED, IN IRREGULARLY WOUND COILS, OF STAINLESS STEEL	5%	0
7222	OTHER BARS AND RODS OF STAINLESS STEEL; ANGLES, SHAPES AND SECTIONS OF STAINLESS STEEL:		
7222.1	-Bars and rods,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hot-drawn or extruded:		
7222.11.00	--Of circular cross-section	0%	0
7222.19.00	--Other	5%	0
7222.20.00	-Bars and rods, not further worked than cold-formed or cold-finished	5%	0
7222.30.00	-Other bars and rods	5%	0
7222.40.00	-Angles, shapes and sections	5%	0
7223.00.00	WIRE OF STAINLESS STEEL	5%	0
7224	OTHER ALLOY STEEL IN INGOTS OR OTHER PRIMARY FORMS; SEMI-FINISHED PRODUCTS OF OTHER ALLOY STEEL:		
7224.10.00	-Ingots and other primary forms	5%	0
7224.90.00	-Other	5%	0
7225	FLAT-ROLLED PRODUCTS OF OTHER ALLOY STEEL, OF A WIDTH OF 600 mm OR MORE:		
7225.1	-Of silicon-electrical steel:		
7225.11.00	--Grain-oriented	5%	0
7225.19.00	--Other	5%	0
7225.30.00	-Other,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in coils	5%	0
7225.40.00	-Other,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not in coils	5%	0
7225.50.00	-Other, not further worked than cold-rolled (cold-reduced)	5%	0
7225.9	-Other:		
7225.91.00	--Electrolytically plated or coated with zinc	5%	0
7225.92.00	--Otherwise plated or coated with zinc	5%	0
7225.99.00	--Other	5%	0
7226	FLAT-ROLLED PRODUCTS OF OTHER ALLOY STEEL, OF A WIDTH OF LESS THAN 600 mm:		
7226.1	-Of silicon-electrical steel:		
7226.11.00	--Grain-oriented	5%	0
7226.19.00	--Other	5%	0
7226.20.00	-Of high speed steel	5%	0
7226.9	-Other:		
7226.91.00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5%	0
7226.92.00	--Not further worked than cold-rolled (cold-reduced)	5%	0
7226.99.00	--Other	5%	0
7227	BARS AND RODS, HOT-ROLLED, IN IRREGULARLY WOUND COILS, OF OTHER ALLOY STEEL:		
7227.10.00	-Of high speed steel	0%	0
7227.20	-Of silico-manganese steel:		
7227.20.10	---"Flattened circles" and "modified rectangles" as defined in Note 1(l) to Chapter 72	5%	0
7227.20.20	---Goods, NSA, as follows: (a) containing less than 0.35% of carbon; (b) containing more than 1.2% of manganese	5%	0
7227.20.90	---Other	5%	0
7227.90	-Other:		
7227.90.10	---Goods, as follows: (a) of high alloy steel; (b) "flattened circles" and "modified rectangles" as defined in Note 1(l) to Chapter 72	5%	0
7227.90.90	---Other	5%	0
7228	OTHER BARS AND RODS OF OTHER ALLOY STEEL; ANGLES, SHAPES AND SECTIONS, OF OTHER ALLOY STEEL; HOLLOW DRILL BARS AND RODS, OF ALLOY OR NON-ALLOY STEEL:		
7228.10.00	-Bars and rods, of high speed steel	5%	0
7228.20	-Bars and rods, of silico-manganese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steel:		
7228.20.10	---"Flattened circles" and "modified rectangles" as defined in Note 1(m) to Chapter 72	5%	0
7228.20.2	---Goods, NSA, as follows: (a) containing less than 0.35% of carbon; (b) containing more than 1.2% of manganese:		
7228.20.21	----Not further worked than cold-formed or cold-finished	5%	0
7228.20.29	----Other	5%	0
7228.20.90	---Other	5%	0
7228.30	-Other bars and rods,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hot-drawn or extruded:		
7228.30.10	---Goods, as follows: (a) of high alloy steel; (b) "flattened circles" and "modified rectangles" as defined in Note 1(m) to Chapter 72	5%	0
7228.30.90	---Other	5%	0
7228.40	-Other bars and rods, not further worked than forged:		
7228.40.10	---Goods, as follows: (a) of high alloy steel; (b) "flattened circles" and "modified rectangles" as defined in Note 1(m) to Chapter 72	5%	0
7228.40.90	---Other	5%	0
7228.50.00	-Other bars and rods, not further worked than cold-formed or cold-finished	5%	0
7228.60	-Other bars and rods:		
7228.60.10	---Goods, as follows: (a) of high alloy steel; (b) "flattened circles" and "modified rectangles" as defined in Note 1(m) to Chapter 72	5%	0
7228.60.90	---Other	5%	0
7228.70.00	-Angles, shapes and sections	5%	0
7228.80.00	-Hollow drill bars and rods	5%	0
7229	WIRE OF OTHER ALLOY STEEL:		
7229.20.00	-Of silico-manganese steel	5%	0
7229.90	-Other:		
7229.90.10	---Of high speed steel	0%	0
7229.90.90	---Other	5%	0
73	ARTICLES OF IRON OR STEEL		
7301	SHEET PILING OF IRON OR STEEL, WHETHER OR NOT DRILLED, PUNCHED OR MADE FROM ASSEMBLED ELEMENTS; WELDED ANGLES, SHAPES AND SECTIONS, OF IRON OR STEEL:		
7301.10.00	-Sheet piling	5%	0
7301.20.00	-Angles, shapes and sections	5%	0
7302	RAILWAY OR TRAMWAY TRACK CONSTRUCTION MATERIAL OF IRON OR STEEL, THE FOLLOWING: RAILS, CHECK-RAILS AND RACK RAILS, SWITCH BLADES, CROSSING FROGS, POINT RODS AND OTHER CROSSING PIECES, SLEEPERS (CROSS-TIES), FISH-PLATES, CHAIRS, CHAIR WEDGES, SOLE PLATES (BASE PLATES), RAIL CLIPS, BEDPLATES, TIES AND OTHER MATERIAL SPECIALIZED FOR JOINTING OR FIXING RAILS:		
7302.10.00	-Rails	5%	0
7302.30.00	-Switch blades, crossing frogs, point rods and other crossing pieces	5%	0
7302.40.00	-Fish-plates and sole plates	5%	0
7302.90.00	-Other	5%	0
7303.00.00	TUBES, PIPES AND HOLLOW PROFILES, OF CAST IRON	5%	0
7304	TUBES, PIPES AND HOLLOW PROFILES, SEAMLESS, OF IRON (OTHER THAN CAST IRON) OR STEEL:		
7304.1	-Line pipe of a kind used for oil or gas pipelines:		
7304.11.00	--Of stainless steel	5%	0
7304.19.00	--Other	5%	0
7304.2	-Casing, tubing and drill pipe, of a kind used in drilling for oil or gas:		
7304.22.00	--Drill pipe of stainless steel	5%	0
7304.23.00	--Other drill pipe	5%	0
7304.24.00	--Other, of stainless steel	5%	0
7304.29.00	--Other	5%	0
7304.3	-Other, of circular cross-section, of iron or non-alloy steel:		
7304.31.00	--Cold-drawn or cold-rolled (cold-reduced)	5%	0
7304.39.00	--Other	5%	0
7304.4	-Other, of circular cross-section, of stainless steel:		
7304.41.00	--Cold-drawn or cold-rolled (cold-reduced)	5%	0
7304.49.00	--Other	5%	0
7304.5	-Other, of circular cross-section, of other alloy steel:		
7304.51.00	--Cold-drawn or cold-rolled (cold-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reduced)		
7304.59.00	--Other	5%	0
7304.90.00	-Other	5%	0
7305	OTHER TUBES AND PIPES (FOR EXAMPLE, WELDED, RIVETED OR SIMILARLY CLOSED), HAVING CIRCULAR CROSS-SECTIONS, THE EXTERNAL DIAMETER OF WHICH EXCEEDS 406.4 mm, OF IRON OR STEEL:		
7305.1	-Line pipe of a kind used for oil or gas pipelines:		
7305.11.00	--Longitudinally submerged arc welded	5%	3
7305.12.00	--Other, longitudinally welded	5%	3
7305.19.00	--Other	5%	5
7305.20.00	-Casing of a kind used in drilling for oil or gas	5%	5
7305.3	-Other, welded:		
7305.31.00	--Longitudinally welded	5%	5
7305.39.00	--Other	5%	5
7305.90.00	-Other	5%	5
7306	OTHER TUBES, PIPES AND HOLLOW PROFILES (FOR EXAMPLE, OPEN SEAM OR WELDED, RIVETED OR SIMILARLY CLOSED), OF IRON OR STEEL:		
7306.1	-Line pipe of a kind used for oil or gas pipelines:		
7306.11.00	--Welded, of stainless steel	5%	5
7306.19.00	--Other	5%	5
7306.2	-Casing and tubing of a kind used in drilling for oil or gas:		
7306.21.00	--Welded, of stainless steel	5%	5
7306.29.00	--Other	5%	5
7306.30.00	-Other, welded, of circular cross-section, of iron or non-alloy steel	5%	5
7306.40.00	-Other, welded, of circular cross-section, of stainless steel	5%	5
7306.50.00	-Other, welded, of circular cross-section, of other alloy steel	5%	5
7306.6	-Other, welded, of non-circular cross-section:		
7306.61.00	--Of square or rectangular cross-section	5%	5
7306.69.00	--Of other non-circular cross-section	5%	5
7306.90.00	-Other	5%	5
7307	TUBE OR PIPE FITTINGS (FOR EXAMPLE, COUPLINGS, ELBOWS, SLEEVES), OF IRON OR STEEL:		
7307.1	-Cast fittings:		
7307.11.00	--Of non-malleable cast iron	5%	0
7307.19.00	--Other	5%	0
7307.2	-Other, of stainless steel:		
7307.21.00	--Flanges	5%	0
7307.22.00	--Threaded elbows, bends and sleeves	5%	0
7307.23.00	--Butt welding fittings	5%	0
7307.29.00	--Other	5%	0
7307.9	-Other:		
7307.91.00	--Flanges	5%	0
7307.92.00	--Threaded elbows, bends and sleeves	5%	0
7307.93.00	--Butt welding fittings	5%	0
7307.99.00	--Other	5%	0
7308	STRUCTURES (EXCLUDING PREFABRICATED BUILDINGS OF 9406.00.00) AND PARTS OF STRUCTURES (FOR EXAMPLE, BRIDGES AND BRIDGE-SECTIONS, LOCK-GATES, TOWERS, LATTICE MASTS, ROOFS, ROOFING FRAMEWORKS, DOORS AND WINDOWS AND THEIR FRAMES AND THRESHOLDS FOR DOORS, SHUTTERS, BALUSTRADES, PILLARS AND COLUMNS), OF IRON OR STEEL; PLATES, RODS, ANGLES, SHAPES, SECTIONS, TUBES AND THE LIKE, PREPARED FOR USE IN STRUCTURES, OF IRON OR STEEL:		
7308.10.00	-Bridges and bridge-sections	5%	0
7308.20.00	-Towers and lattice masts	5%	0
7308.30.00	-Doors, windows and their frames and thresholds for doors	5%	0
7308.40.00	-Equipment for scaffolding, shuttering, propping or pit-propping	5%	0
7308.90.00	-Other	5%	0
7309.00.00	RESERVOIRS, TANKS, VATS AND SIMILAR CONTAINERS FOR ANY MATERIAL (OTHER THAN COMPRESSED OR LIQUEFIED GAS), OF IRON OR STEEL, OF A CAPACITY EXCEEDING 300 L, WHETHER OR NOT LINED OR HEAT INSULA TED, BUT NOT FITTED WITH MECHANICAL OR THERMAL EQUIPMENT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7310	TANKS, CASKS, DRUMS, CANS, BOXES AND SIMILAR CONTAINERS, FOR ANY MATERIAL (OTHER THAN COMPRESSED OR LIQUEFIED GAS), OF IRON OR STEEL, OF A CAPACITY NOT EXCEEDING 300 L, WHETHER OR NOT LINED OR HEAT-INSULATED, BUT NOT FITTED WITH MECHANICAL OR THERMAL EQUIPMENT:		
7310.10.00	-Of a capacity of 50 L or more	5%	0
7310.2	-Of a capacity of less than 50 l:		
7310.21.00	--Cans which are to be closed by soldering or crimping	5%	0
7310.29.00	--Other	5%	0
7311.00.00	CONTAINERS FOR COMPRESSED OR LIQUEFIED GAS, OF IRON OR STEEL	5%	0
7312	STRANDED WIRE, ROPES, CABLES, PLAITED BANDS, SLINGS AND THE LIKE, OF IRON OR STEEL, NOT ELECTRICALLY INSULATED:		
7312.10.00	-Stranded wire, ropes and cables	5%	0
7312.90.00	-Other	5%	0
7313.00.00	BARBED WIRE OF IRON OR STEEL; TWISTED HOOP OR SINGLE FLAT WIRE, BARBED OR NOT, AND LOOSELY TWISTED DOUBLE WIRE, OF A KIND USED FOR FENCING, OF IRON OR STEEL	0%	0
7314	CLOTH (INCLUDING ENDLESS BANDS), GRILL, NETTING AND FENCING, OF IRON OR STEEL WIRE; EXPANDED METAL OF IRON OR STEEL:		
7314.1	-Woven cloth:		
7314.12.00	--Endless bands for machinery, of stainless steel	5%	0
7314.14.00	--Other woven cloth, of stainless steel	5%	0
7314.19.00	--Other	0%	0
7314.20.00	-Grill, netting and fencing, welded at the intersection, of wire with a maximum cross-sectional dimension of 3 mm or more and having a mesh size of 100 cm2 or more	0%	0
7314.3	-Other grill, netting and fencing, welded at the intersection:		
7314.31.00	--Plated or coated with zinc	0%	0
7314.39.00	--Other	0%	0
7314.4	-Other cloth, grill, netting and fencing:		
7314.41.00	--Plated or coated with zinc	0%	0
7314.42.00	--Coated with plastics	0%	0
7314.49.00	--Other	0%	0
7314.50.00	-Expanded metal	5%	0
7315	CHAIN AND PARTS THEREOF, OF IRON OR STEEL:		
7315.1	-Articulated link chain and parts thereof:		
7315.11.00	--Roller chain	5%	0
7315.12.00	--Other chain	5%	0
7315.19.00	--Parts	5%	0
7315.20.00	-Skid chain	0%	0
7315.8	-Other chain:		
7315.81.00	--Stud-link	0%	0
7315.82.00	--Other, welded link	5%	0
7315.89.00	--Other	5%	0
7315.90.00	-Other parts	5%	0
7316.00.00	ANCHORS, GRAPNELS AND PARTS THEREOF, OF IRON OR STEEL	5%	0
7317	NAILS, TACKS, DRAWING PINS, CORRUGATED NAILS, STAPLES (OTHER THAN THOSE OF 8305) AND SIMILAR ARTICLES, OF IRON OR STEEL, WHETHER OR NOT WITH HEADS OF OTHER MATERIAL, BUT EXCLUDING SUCH ARTICLES WITH HEADS OF COPPER:		
7317.00.10	---Horse-shoe nails	0%	0
7317.00.90	---Other	5%	0
7318	SCREWS, BOLTS, NUTS, COACH SCREWS, SCREW HOOKS, RIVETS, COTTERS, COTTER-PINS, WASHERS (INCLUDING SPRING WASHERS) AND SIMILAR ARTICLES, OF IRON OR STEEL:		
7318.1	-Threaded articles:		
7318.11.00	--Coach screws	5%	0
7318.12.00	--Other wood screws	5%	0
7318.13.00	--Screw hooks and screw rings	0%	0
7318.14.00	--Self-tapping screws	5%	0
7318.15.00	--Other screws and bolts, whether or not with their nuts or washers	5%	0
7318.16.00	--Nuts	5%	0
7318.19.00	--Other	5%	0
7318.2	-Non-threaded articles:		
7318.21.00	--Spring washers and other lock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washers		
7318.22.00	--Other washers	5%	0
7318.23.00	--Rivets	5%	0
7318.24.00	--Cotters and cotter-pins	5%	0
7318.29.00	--Other	5%	0
7319	SEWING NEEDLES, KNITTING NEEDLES, BODKINS, CROCHET HOOKS, EMBROIDERY STILETTOS AND SIMILAR ARTICLES, FOR USE IN THE HAND, OF IRON OR STEEL; SAFETY PINS AND OTHER PINS OF IRON OR STEEL,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7319.40.00	-Safety pins and other pins	0%	0
7319.90.00	-Other	0%	0
7320	SPRINGS AND LEAVES FOR SPRINGS, OF IRON OR STEEL:		
7320.10.00	-Leaf-springs and leaves therefore	5%	3
7320.20.00	-Helical springs	5%	3
7320.90.00	-Other	5%	5
7321	STOVES, RANGES, GRATES, COOKERS (INCLUDING THOSE WITH SUBSIDIARY BOILERS FOR CENTRAL HEATING), BARBECUES, BRAZIERS, GAS-RINGS, PLATE WARMERS AND SIMILAR NON-ELECTRIC DOMESTIC APPLIANCES, AND PARTS THEREOF, OF IRON OR STEEL:		
7321.1	-Cooking appliances and plate warmers:		
7321.11.00	--For gas fuel or for both gas and other fuels	5%	0
7321.12.00	--For liquid fuel	5%	0
7321.19.00	--Other, including appliances for solid fuel	5%	0
7321.8	-Other appliances:		
7321.81.00	--For gas fuel or for both gas and other fuels	5%	0
7321.82.00	--For liquid fuel	5%	0
7321.89.00	--Other, including appliances for solid fuel	5%	0
7321.90.00	-Parts	5%	0
7322	RADIATORS FOR CENTRAL HEATING, NOT ELECTRICALLY HEATED, AND PARTS THEREOF, OF IRON OR STEEL; AIR HEATERS AND HOT AIR DISTRIBUTORS (INCLUDING DISTRIBUTORS WHICH CAN ALSO DISTRIBUTE FRESH OR CONDITIONED AIR), NOT ELECTRICALLY HEATED, INCORPORATING A MOTOR-DRIVEN FAN OR BLOWER, AND PARTS THEREOF, OF IRON OR STEEL:		
7322.1	-Radiators and parts thereof:		
7322.11.00	--Of cast iron	5%	3
7322.19.00	--Other	5%	0
7322.90.00	-Other	5%	0
7323	TABLE, KITCHEN OR OTHER HOUSEHOLD ARTICLES AND PARTS THEREOF, OF IRON OR STEEL; IRON OR STEEL WOOL; POT SCOURERS AND SCOURING OR POLISHING PADS, GLOVES AND THE LIKE, OF IRON OR STEEL:		
7323.10.00	-Iron or steel wool; pot scourers and scouring or polishing pads, gloves and the like	5%	0
7323.9	-Other:		
7323.91.00	--Of cast iron, not enamelled	0%	0
7323.92.00	--Of cast iron, enamelled	5%	0
7323.93.00	--Of stainless steel	5%	0
7323.94.00	--Of iron (other than cast iron) or steel, enamelled	5%	0
7323.99.00	--Other	5%	0
7324	SANITARY WARE AND PARTS THEREOF, OF IRON OR STEEL:		
7324.10.00	-Sinks and wash basins, of stainless steel	5%	0
7324.2	-Baths:		
7324.21.00	--Of cast iron, whether or not enamelled	5%	0
7324.29.00	--Other	5%	0
7324.90.00	-Other, including parts	5%	0
7325	OTHER CAST ARTICLES OF IRON OR STEEL:		
7325.10.00	-Of non-malleable cast iron	5%	0
7325.9	-Other:		
7325.91.00	--Grinding balls and similar articles for mills	5%	0
7325.99.00	--Other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7326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7326.1	-Forged or stamped, but not further worked:		
7326.11.00	--Grinding balls and similar articles for mills	5%	0
7326.19.00	--Other	5%	5
7326.20.00	-Articles of iron or steel wire	5%	0
7326.90	-Other:		
7326.90.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0
7326.90.90	---Other	5%	0
74	COPPER AND ARTICLES THEREOF		
7401.00.00	COPPER MATTES; CEMENT COPPER (PRECIPITATED COPPER)	0%	0
7402.00.00	UNREFINED COPPER; COPPER ANODES FOR ELECTROLYTIC REFINING	0%	0
7403	REFINED COPPER AND COPPER ALLOYS, UNWROUGHT:		
7403.1	-Refined copper:		
7403.11.00	--Cathodes and sections of cathodes	0%	0
7403.12.00	--Wire-bars	0%	0
7403.13.00	--Billets	0%	0
7403.19.00	--Other	0%	0
7403.2	-Copper alloys:		
7403.21.00	--Copper-zinc base alloys (brass)	0%	0
7403.22.00	--Copper-tin base alloys (bronze)	0%	0
7403.29.00	--Other copper alloys (other than master alloys of 7405.00.00)	0%	0
7404.00.00	COPPER WASTE AND SCRAP	0%	0
7405.00.00	MASTER ALLOYS OF COPPER	0%	0
7406	COPPER POWDERS AND FLAKES:		
7406.10.00	-Powders of non-lamellar structure	0%	0
7406.20.00	-Powders of lamellar structure; flakes	0%	0
7407	COPPER BARS, RODS AND PROFILES:		
7407.10.00	-Of refined copper	5%	0
7407.2	-Of copper alloys:		
7407.21.00	--Of copper-zinc base alloys (brass)	5%	0
7407.29.00	--Other	5%	0
7408	COPPER WIRE:		
7408.1	-Of refined copper:		
7408.11.00	--Of which the maximum cross-sectional dimension exceeds 6 mm	5%	0
7408.19.00	--Other	5%	0
7408.2	-Of copper alloys:		
7408.21.00	--Of copper-zinc base alloys (brass)	5%	0
7408.22.00	--Of copper-nickel base alloys (cupro-nickel) or copper-nickel-zinc base alloys (nickel silver)	5%	0
7408.29.00	--Other	5%	0
7409	COPPER PLATES, SHEETS AND STRIP, OF A THICKNESS EXCEEDING 0.15 mm:		
7409.1	-Of refined copper:		
7409.11.00	--In coils	5%	0
7409.19.00	--Other	5%	0
7409.2	-Of copper-zinc base alloys (brass):		
7409.21.00	--In coils	5%	0
7409.29.00	--Other	5%	0
7409.3	-Of copper-tin base alloys (bronze):		
7409.31.00	--In coils	5%	0
7409.39.00	--Other	5%	0
7409.40.00	-Of copper-nickel base alloys (cupro-nickel) or copper-nickel-zinc base alloys (nickel silver)	5%	0
7409.90.00	-Of other copper alloys	5%	0
7410	COPPER FOIL (WHETHER OR NOT PRINTED OR BACKED WITH PAPER, PAPERBOARD, PLASTICS OR SIMILAR BACKING MATERIALS) OF A THICKNESS (EXCLUDING ANY BACKING) NOT EXCEEDING 0.15 mm:		
7410.1	-Not backed:		
7410.11.00	--Of refined copper	5%	0
7410.12.00	--Of copper alloys	5%	0
7410.2	-Backed:		
7410.21.00	--Of refined copper	5%	0
7410.22.00	--Of copper alloys	5%	0
7411	COPPER TUBES AND PIPES:		
7411.10.00	-Of refined copper	5%	0
7411.2	-Of copper alloys:		
7411.21.00	--Of copper-zinc base alloys (brass)	5%	0
7411.22.00	--Of copper-nickel base alloys (cupro-nickel) or copper-nickel zinc base alloys (nickel silver)	5%	0
7411.29.00	--Other	5%	0
7412	COPPER TUBE OR PIPE FITTINGS (FOR EXAMPLE, COUPLINGS, ELBOWS, SLEEVES):		
7412.10.00	-Of refined copper	5%	0
7412.20.00	-Of copper alloys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7413.00.00	STRANDED WIRE, CABLES, PLAITED BANDS AND THE LIKE, OF COPPER, NOT ELECTRICALLY INSULATED	5%	0
7415	NAILS, TACKS, DRAWING PINS, STAPLES (OTHER THAN THOSE OF 8305) AND SIMILAR ARTICLES, OF COPPER OR OF IRON OR STEEL WITH HEADS OF COPPER; SCREWS, BOLTS, NUTS, SCREW HOOKS, RIVETS, COTTERS, COTTER-PINS, WASHERS (INCLUDING SPRING WASHERS) AND SIMILAR ARTICLES, OF COPPER:		
7415.10.00	-Nails and tacks, drawing pins, staples and similar articles	5%	0
7415.2	-Other articles, not threaded:		
7415.21.00	--Washers (including spring washers)	5%	0
7415.29.00	--Other	5%	0
7415.3	-Other threaded articles:		
7415.33.00	--Screws; bolts and nuts	5%	0
7415.39.00	--Other	5%	0
7418	TABLE, KITCHEN OR OTHER HOUSEHOLD ARTICLES AND PARTS THEREOF, OF COPPER; POT SCOURERS AND SCOURING OR POLISHING PADS, GLOVES AND THE LIKE, OF COPPER; SANITARY WARE AND PARTS THEREOF, OF COPPER:		
7418.10.00	-Table, kitchen or other household articles and parts thereof; pot scourers and scouring or polishing pads, gloves and the like	5%	0
7418.20.00	-Sanitary ware and parts thereof	5%	0
7419	OTHER ARTICLES OF COPPER:		
7419.10.00	-Chain and parts thereof	0%	0
7419.9	-Other:		
7419.91.00	--Cast, moulded, stamped or forged, but not further worked	5%	0
7419.99.00	--Other	5%	0
75	NICKEL AND ARTICLES THEREOF		
7501	NICKEL MATTES, NICKEL OXIDE SINTERS AND OTHER INTERMEDIATE PRODUCTS OF NICKEL METALLURGY:		
7501.10.00	-Nickel mattes	0%	0
7501.20.00	-Nickel oxide sinters and other intermediate products of nickel metallurgy	0%	0
7502	UNWROUGHT NICKEL:		
7502.10.00	-Nickel, not alloyed	0%	0
7502.20.00	-Nickel alloys	0%	0
7503.00.00	NICKEL WASTE AND SCRAP	0%	0
7504.00.00	NICKEL POWDERS AND FLAKES	0%	0
7505	NICKEL BARS, RODS, PROFILES AND WIRE:		
7505.1	-Bars, rods and profiles:		
7505.11.00	--Of nickel, not alloyed	0%	0
7505.12.00	--Of nickel alloys	0%	0
7505.2	-Wire:		
7505.21.00	--Of nickel, not alloyed	0%	0
7505.22.00	--Of nickel alloys	0%	0
7506	NICKEL PLATES, SHEETS, STRIP AND FOIL:		
7506.10.00	-Of nickel, not alloyed	0%	0
7506.20.00	-Of nickel alloys	0%	0
7507	NICKEL TUBES, PIPES AND TUBE OR PIPE FITTINGS (FOR EXAMPLE, COUPLINGS, ELBOWS, SLEEVES):		
7507.1	-Tubes and pipes:		
7507.11.00	--Of nickel, not alloyed	0%	0
7507.12.00	--Of nickel alloys	0%	0
7507.20.00	-Tube or pipe fittings	5%	0
7508	OTHER ARTICLES OF NICKEL:		
7508.10.00	-Cloth, grill and netting, of nickel wire	0%	0
7508.90.00	-Other	0%	0
76	ALUMINIUM AND ARTICLES THEREOF		
7601	UNWROUGHT ALUMINIUM:		
7601.10.00	-Aluminium, not alloyed	0%	0
7601.20.00	-Aluminium alloys	0%	0
7602.00.00	ALUMINIUM WASTE AND SCRAP	0%	0
7603	ALUMINIUM POWDERS AND FLAKES:		
7603.10.00	-Powders of non-lamellar structure	0%	0
7603.20.00	-Powders of lamellar structure; flakes	0%	0
7604	ALUMINIUM BARS, RODS AND PROFILES:		
7604.10.00	-Of aluminium, not alloyed	5%	0
7604.2	-Of aluminium alloys:		
7604.21.00	--Hollow profiles	5%	0
7604.29.00	--Other	5%	0
7605	ALUMINIUM WIRE:		
7605.1	-Of aluminium, not alloyed:		
7605.11.00	--Of which the maximum cross-sectional dimension exceeds 7 mm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7605.19.00	--Other	5%	0
7605.2	-Of aluminium alloys:		
7605.21.00	--Of which the maximum cross-sectional dimension exceeds 7 mm	5%	0
7605.29.00	--Other	5%	0
7606	ALUMINIUM PLATES, SHEETS AND STRIP, OF A THICKNESS EXCEEDING 0.2 mm:		
7606.1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7606.11.00	--Of aluminium, not alloyed	5%	0
7606.12.00	--Of aluminium alloys	5%	0
7606.9	-Other:		
7606.91.00	--Of aluminium, not alloyed	5%	0
7606.92.00	--Of aluminium alloys	5%	0
7607	ALUMINIUM FOIL (WHETHER OR NOT PRINTED OR BACKED WITH PAPER, PAPERBOARD, PLASTICS OR SIMILAR BACKING MATERIALS) OF A THICKNESS (EXCLUDING ANY BACKING) NOT EXCEEDING 0.2 mm:		
7607.1	-Not backed:		
7607.11.00	--Rolled but not further worked	5%	0
7607.19.00	--Other	5%	0
7607.20.00	-Backed	5%	0
7608	ALUMINIUM TUBES AND PIPES:		
7608.10.00	-Of aluminium, not alloyed	5%	0
7608.20.00	-Of aluminium alloys	5%	0
7609.00.00	ALUMINIUM TUBE OR PIPE FITTINGS (FOR EXAMPLE, COUPLINGS, ELBOWS, SLEEVES)	5%	0
7610	ALUMINIUM STRUCTURES (EXCLUDING PREFABRICATED BUILDINGS OF 9406.00.00) AND PARTS OF STRUCTURES (FOR EXAMPLE, BRIDGES AND BRIDGE-SECTIONS, TOWERS, LATTICE MASTS, ROOFS, ROOFING FRAMEWORKS, DOORS AND WINDOWS AND THEIR FRAMES AND THRESHOLDS FOR DOORS, BALUSTRADES, PILLARS AND COLUMNS); ALUMINIUM PLATES, RODS, PROFILES, TUBES AND THE LIKE, PREPARED FOR USE IN STRUCTURES:		
7610.10.00	-Doors, windows and their frames and thresholds for doors	5%	0
7610.90.00	-Other	5%	0
7611.00.00	ALUMINIUM RESERVOIRS, TANKS, VATS AND SIMILAR CONTAINERS, FOR ANY MATERIAL (OTHER THAN COMPRESSED OR LIQUEFIED GAS), OF A CAPACITY EXCEEDING 300 L, WHETHER OR NOT LINED OR HEAT-INSULATED, BUT NOT FITTED WITH MECHANICAL OR THERMAL EQUIPMENT	5%	0
7612	ALUMINIUM CASKS, DRUMS, CANS, BOXES AND SIMILAR CONTAINERS (INCLUDING RIGID OR COLLAPSIBLE TUBULAR CONTAINERS), FOR ANY MATERIAL (OTHER THAN COMPRESSED OR LIQUEFIED GAS), OF A CAPACITY NOT EXCEEDING 300 L, WHETHER OR NOT LINED OR HEAT-INSULATED, BUT NOT FITTED WITH MECHANICAL OR THERMAL EQUIPMENT:		
7612.10.00	-Collapsible tubular containers	0%	0
7612.90.00	-Other	5%	0
7613.00.00	ALUMINIUM CONTAINERS FOR COMPRESSED OR LIQUEFIED GAS	5%	0
7614	STRANDED WIRE, CABLES, PLAITED BANDS AND THE LIKE, OF ALUMINIUM, NOT ELECTRICALLY INSULATED:		
7614.10.00	-With steel core	5%	0
7614.90.00	-Other	5%	0
7615	TABLE, KITCHEN OR OTHER HOUSEHOLD ARTICLES AND PARTS THEREOF, OF ALUMINIUM; POT SCOURERS AND SCOURING OR POLISHING PADS, GLOVES AND THE LIKE, OF ALUMINIUM; SANITARY WARE AND PARTS THEREOF, OF ALUMINIUM:		
7615.10.00	-Table, kitchen or other household articles and parts thereof; pot scourers and scouring or polishing pads, gloves and the like	5%	0
7615.20.00	-Sanitary ware and parts thereof	5%	0
7616	OTHER ARTICLES OF ALUMINIUM: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7616.10.00	-Nails, tacks, staples (other than those of 8305), screws, bolts, nuts, screw hooks, rivets, cotters, cotter-pins, washers and similar articles	5%	0
7616.9	-Other:		
7616.91.00	--Cloth, grill, netting and fencing, of aluminium wire	5%	0
7616.99.00	--Other	5%	0
78	LEAD AND ARTICLES THEREOF		
7801	UNWROUGHT LEAD:		
7801.10.00	-Refined lead	0%	0
7801.9	-Other:		
7801.91.00	--Containing by weight antimony as the principal other element	0%	0
7801.99.00	--Other	0%	0
7802.00.00	LEAD WASTE AND SCRAP	0%	0
7804	LEAD PLATES, SHEETS, STRIP AND FOIL; LEAD POWDERS AND FLAKES:		
7804.1	-Plates, sheets, strip and foil:		
7804.11.00	--Sheets, strip and foil of a thickness (excluding any backing) not exceeding 0.2 mm	0%	0
7804.19.00	--Other	0%	0
7804.20.00	-Powders and flakes	0%	0
7806	OTHER ARTICLES OF LEAD:		
7806.00.10	---Goods, as follows: (a) lead bars, rods, profiles and wire; (b) lead tubes, pipes and tube or pipe fittings (for example, couplings, elbows, sleeves)	0%	0
7806.00.90	---Other	5%	0
79	ZINC AND ARTICLES THEREOF		
7901	UNWROUGHT ZINC:		
7901.1	-Zinc, not alloyed:		
7901.11.00	--Containing by weight 99.99% or more of zinc	0%	0
7901.12.00	--Containing by weight less than 99.99% of zinc	0%	0
7901.20.00	-Zinc alloys	0%	0
7902.00.00	ZINC WASTE AND SCRAP	0%	0
7903	ZINC DUST, POWDERS AND FLAKES:		
7903.10.00	-Zinc dust	0%	0
7903.90.00	-Other	0%	0
7904.00.00	ZINC BARS, RODS, PROFILES AND WIRE	0%	0
7905.00.00	ZINC PLATES, SHEETS, STRIP AND FOIL	0%	0
7907	OTHER ARTICLES OF ZINC:		
7907.00.10	---Zinc tubes, pipes and tube or pipe fittings (for example, couplings, elbows, sleeves)	0%	0
7907.00.90	---Other	5%	0
80	TIN AND ARTICLES THEREOF		
8001	UNWROUGHT TIN:		
8001.10.00	-Tin, not alloyed	0%	0
8001.20.00	-Tin alloys	0%	0
8002.00.00	TIN WASTE AND SCRAP	0%	0
8003.00.00	TIN BARS, RODS, PROFILES AND WIRE	0%	0
8007.00.00	OTHER ARTICLES OF TIN	0%	0
81	OTHER BASE METALS; CERMETS; ARTICLES THEREOF		
8101	TUNGSTEN (WOLFRAM)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		
8101.10.00	-Powders	0%	0
8101.9	-Other:		
8101.94.00	--Unwrought tungsten, including bars and rods obtained simply by sintering	0%	0
8101.96.00	--Wire	0%	0
8101.97.00	--Waste and scrap	0%	0
8101.99.00	--Other	0%	0
8102	MOLYBDENUM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		
8102.10.00	-Powders	0%	0
8102.9	-Other:		
8102.94.00	--Unwrought molybdenum, including bars and rods obtained simply by sintering	0%	0
8102.95.00	--Bars and rods, other than those obtained simply by sintering, profiles, plates, sheets, strip and foil	0%	0
8102.96.00	--Wire	0%	0
8102.97.00	--Waste and scrap	0%	0
8102.99.00	--Other	0%	0
8103	TANTALUM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		
8103.20.00	-Unwrought tantalum, including bars and rods obtained simply by sintering; powders	0%	0
8103.30.00	-Waste and scrap	0%	0
8103.90.00	-Other	0%	0
8104	MAGNESIUM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104.1	-Unwrought magnesium:		
8104.11.00	--Containing at least 99.8% by weight of magnesium	0%	0
8104.19.00	--Other	0%	0
8104.20.00	-Waste and scrap	0%	0
8104.30.00	-Raspings, turnings and granules, graded according to size; powders	0%	0
8104.90.00	-Other	0%	0
8105	COBALT MATTES AND OTHER INTERMEDIATE PRODUCTS OF COBALT METALLURGY; COBALT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		
8105.20.00	-Cobalt mattes and other intermediate products of cobalt metallurgy; unwrought cobalt; powders	0%	0
8105.30.00	-Waste and scrap	0%	0
8105.90.00	-Other	0%	0
8106.00.00	BISMUTH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	0%	0
8107	CADMIUM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		
8107.20.00	-Unwrought cadmium; powders	0%	0
8107.30.00	-Waste and scrap	0%	0
8107.90.00	-Other	0%	0
8108	TITANIUM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		
8108.20.00	-Unwrought titanium; powders	0%	0
8108.30.00	-Waste and scrap	0%	0
8108.90.00	-Other	0%	0
8109	ZIRCONIUM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		
8109.20.00	-Unwrought zirconium; powders	0%	0
8109.30.00	-Waste and scrap	0%	0
8109.90.00	-Other	0%	0
8110	ANTIMONY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		
8110.10.00	-Unwrought antimony; powders	0%	0
8110.20.00	-Waste and scrap	0%	0
8110.90.00	-Other	0%	0
8111.00.00	MANGANESE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	0%	0
8112	BERYLLIUM, CHROMIUM, GERMANIUM, VANADIUM, GALLIUM, HAFNIUM, INDIUM, NIOBIUM (COLUMBIUM), RHENIUM AND THALLIUM, AND ARTICLES OF THESE METALS, INCLUDING WASTE AND SCRAP:		
8112.1	-Beryllium:		
8112.12.00	--Unwrought; powders	0%	0
8112.13.00	--Waste and scrap	0%	0
8112.19.00	--Other	0%	0
8112.2	-Chromium:		
8112.21.00	--Unwrought; powders	0%	0
8112.22.00	--Waste and scrap	0%	0
8112.29.00	--Other	0%	0
8112.5	-Thallium:		
8112.51.00	--Unwrought; powders	0%	0
8112.52.00	--Waste and scrap	0%	0
8112.59.00	--Other	0%	0
8112.9	-Other:		
8112.92.00	--Unwrought; waste and scrap; powders	0%	0
8112.99.00	--Other	0%	0
8113.00.00	CERMETS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	0%	0
82	TOOLS, IMPLEMENTS, CUTLERY, SPOONS AND FORKS, OF BASE METAL; PARTS THEREOF OF BASE METAL		
8201	HAND TOOLS, THE FOLLOWING: SPADES, SHOVELS, MATTOCKS, PICKS, HOES, FORKS AND RAKES; AXES, BILL HOOKS AND SIMILAR HEWING TOOLS; SECATEURS AND PRUNERS OF ANY KIND; SCYTHES, SICKLES, HAY KNIVES, HEDGE SHEARS, TIMBER WEDGES AND OTHER TOOLS OF A KIND USED IN AGRICULTURE, HORTICULTURE OR FORESTRY:		
8201.10.00	-Spades and shovels	5%	0
8201.30.00	-Mattocks, picks, hoes and rakes	5%	0
8201.40.00	-Axes, bill hooks and similar hewing tools	5%	0
8201.50.00	-Secateurs and similar one-handed pruners and shears (including poultry shears)	5%	0
8201.60.00	-Hedge shears, two-handed pruning shears and similar two-handed shears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201.90.00	-Other hand tools of a kind used in agriculture, horticulture or forestry	5%	0
8202	HAND SAWS; BLADES FOR SAWS OF ALL KINDS (INCLUDING SLITTING, SLOTTING OR TOOTHLESS SAW BLADES):		
8202.10.00	-Hand saws	5%	0
8202.20.00	-Band saw blades	5%	0
8202.3	-Circular saw blades (including slitting or slotting saw blades):		
8202.31.00	--With working part of steel	5%	0
8202.39.00	--Other, including parts	5%	0
8202.40.00	-Chain saw blades	0%	0
8202.9	-Other saw blades:		
8202.91.00	--Straight saw blades, for working metal	5%	0
8202.99.00	--Other	5%	0
8203	FILES, RASPS, PLIERS (INCLUDING CUTTING PLIERS), PINCERS, TWEEZERS, METAL CUTTING SHEARS, PIPE-CUTTERS, BOLT CROPPERS, PERFORATING PUNCHES AND SIMILAR HAND TOOLS:		
8203.10.00	-Files, rasps and similar tools	5%	0
8203.20.00	-Pliers (including cutting pliers), pincers, tweezers and similar tools	5%	0
8203.30.00	-Metal cutting shears and similar tools	5%	0
8203.40.00	-Pipe-cutters, bolt croppers, perforating punches and similar tools	5%	0
8204	HAND-OPERATED SPANNERS AND WRENCHES (INCLUDING TORQUE METER WRENCHES BUT NOT INCLUDING TAP WRENCHES); INTERCHANGEABLE SPANNER SOCKETS, WITH OR WITHOUT HANDLES:		
8204.1	-Hand-operated spanners and wrenches:		
8204.11.00	--Non-adjustable	5%	0
8204.12.00	--Adjustable	5%	0
8204.20.00	-Interchangeable spanner sockets, with or without handles	5%	0
8205	HAND TOOLS (INCLUDING GLAZIERS' DIAMOND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BLOW LAMPS; VICES, CLAMPS AND THE LIKE, OTHER THAN ACCESSORIES FOR AND PARTS OF, MACHINE-TOOLS; ANVILS; PORTABLE FORGES; HAND- OR PEDAL-OPERATED GRINDING WHEELS WITH FRAMEWORKS:		
8205.10.00	-Drilling, threading or tapping tools	5%	0
8205.20.00	-Hammers and sledge hammers	5%	0
8205.30.00	-Planes, chisels, gouges and similar cutting tools for working wood	5%	0
8205.40.00	-Screwdrivers	5%	0
8205.5	-Other hand tools (including glaziers' diamonds):		
8205.51.00	--Household tools	5%	0
8205.59.00	--Other	5%	0
8205.60.00	-Blow lamps	0%	0
8205.70.00	-Vices, clamps and the like	5%	0
8205.90.00	-Other, including sets of articles of two or more of the foregoing subheadings of this heading	5%	0
8206.00.00	TOOLS OF TWO OR MORE OF 8202 TO 8205, PUT UP IN SETS FOR RETAIL SALE	5%	0
8207	INTERCHANGEABLE TOOLS FOR HAND TOOLS, WHETHER OR NOT POWER-OPERATED, OR FOR MACHINE-TOOLS (FOR EXAMPLE, FOR PRESSING, STAMPING, PUNCHING, TAPPING, THREADING, DRILLING, BORING, BROACHING, MILLING, TURNING OR SCREW DRIVING), INCLUDING DIES FOR DRAWING OR EXTRUDING METAL, AND ROCK DRILLING OR EARTH BORING TOOLS:		
8207.1	-Rock drilling or earth boring tools:		
8207.13.00	--With working part of cermets	5%	0
8207.19.00	--Other, including parts	5%	0
8207.20.00	-Dies for drawing or extruding metal	5%	0
8207.30.00	-Tools for pressing, stamping or punching	5%	0
8207.40.00	-Tools for tapping or threading	5%	0
8207.50.00	-Tools for drilling, other than for rock drilling	5%	0
8207.60.00	-Tools for boring or broaching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207.70.00	-Tools for milling	5%	0
8207.80.00	-Tools for turning	5%	0
8207.90.00	-Other interchangeable tools	5%	0
8208	KNIVES AND CUTTING BLADES, FOR MACHINES OR FOR MECHANICAL APPLIANCES:		
8208.10.00	-For metal working	5%	0
8208.20.00	-For wood working	5%	0
8208.30.00	-For kitchen appliances or for machines used by the food industry	5%	0
8208.40	-For agricultural, horticultural or forestry machines:		
8208.40.10	---Designed for use with wood chipping machines	5%	0
8208.40.90	---Other	0%	0
8208.90.00	-Other	5%	0
8209.00.00	PLATES, STICKS, TIPS AND THE LIKE FOR TOOLS, UNMOUNTED, OF CERMETS	5%	0
8210.00.00	HAND-OPERATED MECHANICAL APPLIANCES, WEIGHING 10 kg OR LESS, USED IN THE PREPARATION, CONDITIONING OR SERVING OF FOOD OR DRINK	5%	0
8211	KNIVES WITH CUTTING BLADES, SERRATED OR NOT (INCLUDING PRUNING KNIVES), OTHER THAN KNIVES OF 8208, AND BLADES THEREFOR:		
8211.10.00	-Sets of assorted articles	5%	0
8211.9	-Other:		
8211.91.00	--Table knives having fixed blades	5%	0
8211.92	--Other knives having fixed blades:		
8211.92.10	---Kitchen knives, butchers' knives and slaughtermen's knives	5%	0
8211.92.90	---Other	5%	0
8211.93.00	--Knives having other than fixed blades	0%	0
8211.94	--Blades:		
8211.94.10	---For table knives, kitchen knives, butchers' knives and slaughtermen's knives	5%	0
8211.94.90	---Other	5%	0
8211.95	--Handles of base metal:		
8211.95.10	---For table knives, kitchen knives, butchers' knives and slaughtermen's knives	5%	0
8211.95.90	---Other	5%	0
8212	RAZORS AND RAZOR BLADES (INCLUDING RAZOR BLADE BLANKS IN STRIPS):		
8212.10.00	-Razors	0%	0
8212.20.00	-Safety razor blades, including razor blade blanks in strips	0%	0
8212.90.00	-Other parts	0%	0
8213.00.00	SCISSORS, TAILORS' SHEARS AND SIMILAR SHEARS, AND BLADES THEREFOR	0%	0
8214	OTHER ARTICLES OF CUTLERY (FOR EXAMPLE, HAIR CLIPPERS, BUTCHERS' OR KITCHEN CLEAVERS, CHOPPERS AND MINCING KNIVES, PAPER KNIVES); MANICURE OR PEDICURE SETS AND INSTRUMENTS (INCLUDING NAIL FILES):		
8214.10.00	-Paper knives, letter openers, erasing knives, pencil sharpeners and blades therefor	0%	0
8214.20.00	-Manicure or pedicure sets and instruments (including nail files)	0%	0
8214.90.00	-Other	0%	0
8215	SPOONS, FORKS, LADLES, SKIMMERS, CAKE-SERVERS, FISH-KNIVES, BUTTER-KNIVES, SUGAR TONGS AND SIMILAR KITCHEN OR TABLEWARE:		
8215.10.00	-Sets of assorted articles containing at least one article plated with precious metal	5%	0
8215.20.00	-Other sets of assorted articles	5%	0
8215.9	-Other:		
8215.91.00	--Plated with precious metal	5%	0
8215.99.00	--Other	5%	0
83	MISCELLANEOUS ARTICLES OF BASE METAL		
8301	PADLOCKS AND LOCKS (KEY, COMBINATION OR ELECTRICALLY OPERATED), OF BASE METAL; CLASPS AND FRAMES WITH CLASPS, INCORPORATING LOCKS, OF BASE METAL; KEYS FOR ANY OF THE FOREGOING ARTICLES, OF BASE METAL:		
8301.10.00	-Padlocks	5%	0
8301.20.00	-Locks of a kind used for motor vehicles	5%	5
8301.30.00	-Locks of a kind used for furniture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301.40.00	-Other locks	5%	0
8301.50.00	-Clasps and frames with clasps, incorporating locks	0%	0
8301.60.00	-Parts	5%	5
8301.70.00	-Keys presented separately	5%	5
8302	BASE METAL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FURNITURE, DOORS, STAIRCASES, WINDOWS, BLINDS, COACHWORK, SADDLERY, TRUNKS, CHESTS, CASKETS OR THE LIKE; BASE METAL HAT-RACKS, HAT-PEGS, BRACKETS AND SIMILAR FIXTURES; CASTORS WITH MOUNTINGS OF BASE METAL; AUTOMATIC DOOR CLOSERS OF BASE METAL:		
8302.10.00	-Hinges	5%	5
8302.20.00	-Castors	5%	0
8302.30.00	-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motor vehicles	5%	5
8302.4	-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8302.41.00	--Suitable for buildings	5%	0
8302.42.00	--Other, suitable for furniture	5%	0
8302.49.00	--Other	5%	0
8302.50.00	-Hat-racks, hat-pegs, brackets and similar fixtures	5%	0
8302.60.00	-Automatic door closers	5%	0
8303.00.00	ARMOURED OR REINFORCED SAFES, STRONG-BOXES AND DOORS AND SAFE DEPOSIT LOCKERS FOR STRONG-ROOMS, CASH OR DEED BOXES AND THE LIKE, OF BASE METAL	5%	0
8304.00.00	FILING CABINETS, CARD-INDEX CABINETS, PAPER TRAYS, PAPER RESTS, PEN TRAYS, OFFICE-STAMP STANDS AND SIMILAR OFFICE OR DESK EQUIPMENT, OF BASE METAL, OTHER THAN OFFICE FURNITURE OF 9403	5%	0
8305	FITTINGS FOR LOOSE-LEAF BINDERS OR FILES, LETTER CLIPS, LETTER CORNERS, PAPER CLIPS, INDEXING TAGS AND SIMILAR OFFICE ARTICLES, OF BASE METAL; STAPLES IN STRIPS (FOR EXAMPLE, FOR OFFICES, UPHOLSTERY, PACKAGING), OF BASE METAL:		
8305.10.00	-Fittings for loose-leaf binders or files	5%	0
8305.20.00	-Staples in strips	5%	0
8305.90.00	-Other, including parts	5%	0
8306	BELLS, GONGS AND THE LIKE, NON-ELECTRIC, OF BASE METAL; STATUETTES AND OTHER ORNAMENTS, OF BASE METAL; PHOTOGRAPH, PICTURE OR SIMILAR FRAMES, OF BASE METAL; MIRRORS OF BASE METAL:		
8306.10.00	-Bells, gongs and the like	5%	0
8306.2	-Statuettes and other ornaments:		
8306.21.00	--Plated with precious metal	5%	0
8306.29.00	--Other	5%	0
8306.30.00	-Photograph, picture or similar frames; mirrors	5%	0
8307	FLEXIBLE TUBING OF BASE METAL, WITH OR WITHOUT FITTINGS:		
8307.10.00	-Of iron or steel	5%	0
8307.90.00	-Of other base metal	5%	0
8308	CLASPS, FRAMES WITH CLASPS, BUCKLES, BUCKLE-CLASPS, HOOKS, EYES, EYELETS AND THE LIKE, OF BASE METAL, OF A KIND USED FOR CLOTHING, FOOTWEAR, AWNINGS, HANDBAGS, TRAVEL GOODS OR OTHER MADE UP ARTICLES; TUBULAR OR BIFURCATED RIVETS, OF BASE METAL; BEADS AND SPANGLES, OF BASE METAL:		
8308.10.00	-Hooks, eyes and eyelets	5%	0
8308.20.00	-Tubular or bifurcated rivets	5%	0
8308.90.00	-Other, including parts	5%	0
8309	STOPPERS, CAPS AND LIDS (INCLUDING CROWN CORKS, SCREW CAPS AND POURING STOPPERS), CAPSULES FOR BOTTLES, THREADED BUNGS, BUNG COVERS, SEALS AND OTHER PACKING ACCESSORIES, OF BASE METAL:		
8309.10.00	-Crown corks	5%	0
8309.90.00	-Other	5%	0
8310.00.00	SIGN PLATES, NAME-PLATES, ADDRESS-PLATES AND SIMILAR PLATES, NUMBERS, LETTERS AND OTHER SYMBOLS, OF BASE	5%	5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METAL, EXCLUDING THOSE OF 9405		
8311	WIRE, RODS, TUBES, PLATES, ELECTRODES AND SIMILAR PRODUCTS, OF BASE METAL OR OF METAL CARBIDES, COATED OR CORED WITH FLUX MATERIAL, OF A KIND USED FOR SOLDERING, BRAZING, WELDING OR DEPOSITION OF METAL OR OF METAL CARBIDES; WIRE AND RODS, OF AGGLOMERATED BASE METAL POWDER, USED FOR METAL SPRAYING:		
8311.10.00	-Coated electrodes of base metal, for electric arc-welding	5%	0
8311.20.00	-Cored wire of base metal, for electric arc-welding	5%	0
8311.30.00	-Coated rods and cored wire, of base metal, for soldering, brazing or welding by flame	5%	0
8311.90.00	-Other	0%	0
84	NUCLEAR REACTORS, BOILERS, MACHINERY AND MECHANICAL APPLIANCES; PARTS THEREOF		
8401	NUCLEAR REACTORS; FUEL ELEMENTS (CARTRIDGES), NON-IRRADIATED, FOR NUCLEAR REACTORS; MACHINERY AND APPARATUS FOR ISOTOPIC SEPARATION:		
8401.10.00	-Nuclear reactors	5%	0
8401.20.00	-Machinery and apparatus for isotopic separation, and parts thereof	0%	0
8401.30.00	-Fuel elements (cartridges), non-irradiated	5%	0
8401.40.00	-Parts of nuclear reactors	5%	0
8402	STEAM OR OTHER VAPOUR GENERATING BOILERS (OTHER THAN CENTRAL HEATING HOT WATER BOILERS CAPABLE ALSO OF PRODUCING LOW PRESSURE STEAM); SUPER-HEATED WATER BOILERS:		
8402.1	-Steam or other vapour generating boilers:		
8402.11.00	--Watertube boilers with a steam production exceeding 45 t per hour	5%	0
8402.12.00	--Watertube boilers with a steam production not exceeding 45 t per hour	5%	0
8402.19.00	--Other vapour generating boilers, including hybrid boilers	5%	0
8402.20.00	-Super-heated water boilers	5%	0
8402.90.00	-Parts	5%	0
8403	CENTRAL HEATING BOILERS OTHER THAN THOSE OF 8402:		
8403.10.00	-Boilers	5%	0
8403.90.00	-Parts	5%	0
8404	AUXILIARY PLANT FOR USE WITH BOILERS OF8402 OR 8403 (FOR EXAMPLE, ECONOMISERS, SUPER-HEATERS, SOOT REMOVERS, GAS RECOVERERS); CONDENSERS FOR STEAM OR OTHER VAPOUR POWER UNITS:		
8404.10.00	-Auxiliary plant for use with boilers of 8402 or 8403	5%	0
8404.20.00	-Condensers for steam or other vapour power units	5%	0
8404.90.00	-Parts	5%	0
8405	PRODUCER GAS OR WATER GAS GENERATORS, WITH OR WITHOUT THEIR PURIFIERS; ACETYLENE GAS GENERATORS AND SIMILAR WATER PROCESS GAS GENERATORS, WITH OR WITHOUT THEIR PURIFIERS:		
8405.10.00	-Producer gas or water gas generators, with or without their purifiers; acetylene gas generators and similar water process gas generators, with or without their purifiers	5%	0
8405.90.00	-Parts	5%	0
8406	STEAM TURBINES AND OTHER VAPOUR TURBINES:		
8406.10.00	-Turbines for marine propulsion	0%	0
8406.8	-Other turbines:		
8406.81.00	--Of an output exceeding 40 MW	0%	0
8406.82.00	--Of an output not exceeding 40 MW	0%	0
8406.90.00	-Parts	0%	0
8407	SPARK-IGNITION RECIPROCATING OR ROTARY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		
8407.10.00	-Aircraft engines	0%	0
8407.2	-Marine propulsion engines:		
8407.21.00	--Outboard motors	0%	0
8407.29.00	--Other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407.3	-Reciprocating piston engines of a kind used for the propulsion of vehicles of Chapter 87:		
8407.31.00	--Of a cylinder capacity not exceeding 50 cm3	0%	0
8407.32.00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50 cm3 but not exceeding 250 cm3	0%	0
8407.33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250 cm3 but not exceeding 1 000 cm3:		
8407.33.10	---For use in the assembly or manufacture of passenger motor vehicles	5%	3
8407.33.90	---Other	0%	0
8407.34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1 000 cm3:		
8407.34.10	---For use in the assembly or manufacture of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8407.34.20	---Engines, NSA, of a kind used with vehicles of 8701.20.00, 8702, 8703, 8704 or 8705	5%	0
8407.34.90	---Other	0%	0
8407.90	-Other engines:		
8407.90.10	---For use in the assembly or manufacture of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8407.90.20	---Engines, NSA, of a kind used with vehicles of 8701.20.00, 8702, 8703, 8704 or 8705	0%	0
8407.90.30	---Engines, NSA, having a power not exceeding 3.6 kW	5%	0
8407.90.90	---Other	0%	0
8408	COMPRESSION-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 (DIESEL OR SEMI-DIESEL ENGINES):		
8408.10.00	-Marine propulsion engines	0%	0
8408.20	-Engines of a kind used for the propulsion of vehicles of Chapter 87:		
8408.20.10	---For use in the assembly or manufacture of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8408.20.20	---Engines, NSA, of a kind used with vehicles of 8701.20.00, 8702, 8703, 8704 or 8705	5%	5
8408.20.90	---Other	0%	0
8408.90.00	-Other engines	0%	0
8409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ENGINES OF 8407 OR 8408:		
8409.10.00	-For aircraft engines	5%	0
8409.9	-Other:		
8409.91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		
8409.91.10	---Parts, as follows: (a) carburettors, and parts thereof, not being suitable for use with motorcycles; (b) piston pins; (c) piston rings; (d) valves; (e) of engines of a kind used with vehicles of 8701.20.00, 8702, 8703, 8704 or 8705; (f) of a kind used with engines having a power not exceeding 4.5 kW of 8407.31.00	5%	0
8409.91.90	---Other	0%	0
8409.99	--Other:		
8409.99.10	---Parts, as follows: (a) piston pins; (b) piston rings; (c) valves; (d) for engines of a kind used with vehicles of 8701.20.00, 8702, 8703, 8704 or 8705, but not including fuel injection equipment and parts thereof unless for use in the assembly or manufacture of those vehicles	5%	3
8409.99.90	---Other	0%	0
8410	HYDRAULIC TURBINES, WATER WHEELS, AND REGULATORS THEREFOR:		
8410.1	-Hydraulic turbines and water wheels:		
8410.11.00	--Of a power not exceeding 1 000 kW	5%	0
8410.12.00	--Of a power exceeding 1 000 kW but not exceeding 10 000 kW	5%	0
8410.13.00	--Of a power exceeding 10 000 kW	5%	0
8410.90.00	-Parts, including regulators	5%	0
8411	TURBO-JETS, TURBO-PROPELLERS AND OTHER GAS TURBINES:		
8411.1	-Turbo-jets:		
8411.11.00	--Of a thrust not exceeding 25 kN	0%	0
8411.12.00	--Of a thrust exceeding 25 kN	0%	0
8411.2	-Turbo-propellers:		
8411.21.00	--Of a power not exceeding 1 100 kW	0%	0
8411.22.00	--Of a power exceeding 1 100 kW	0%	0
8411.8	-Other gas turbines:		
8411.81.00	--Of a power not exceeding 5 000 kW	0%	0
8411.82.00	--Of a power exceeding 5 000 kW	0%	0
8411.9	-Parts:		
8411.91.00	--Of turbo-jets or turbo-propellers	0%	0
8411.99.00	--Other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412	OTHER ENGINES AND MOTORS:		
8412.10.00	-Reaction engines other than turbo-jets	0%	0
8412.2	-Hydraulic power engines and motors:		
8412.21.00	--Linear acting (cylinders)	5%	0
8412.29.00	--Other	5%	0
8412.3	-Pneumatic power engines and motors:		
8412.31.00	--Linear acting (cylinders)	5%	0
8412.39	--Other:		
8412.39.10	---Goods, as follows: (a) actuators for the mechanical operation of control valves; (b) engines operated by an external source of compressed gas and having a maximum gas consumption rate not exceeding 0.07 m3/minute	5%	0
8412.39.90	---Other	0%	0
8412.80.00	-Other	0%	0
8412.90	-Parts:		
8412.90.10	---For engines of 8412.10.00, 8412.39.90 or 8412.80.00	0%	0
8412.90.90	---Other	5%	0
8413	PUMPS FOR LIQUIDS, WHETHER OR NOT FITTED WITH A MEASURING DEVICE; LIQUID ELEVATORS:		
8413.1	-Pumps fitted or designed to be fitted with a measuring device:		
8413.11.00	--Pumps for dispensing fuel or lubricants, of the type used in filling-stations or in garages	5%	0
8413.19.00	--Other	5%	0
8413.20.00	-Hand pumps, other than those of 8413.11.00 or 8413.19.00	5%	0
8413.30	-Fuel, lubricating or cooling medium pumps for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		
8413.30.10	---Pumps, as follows: (a) fuel pumps, used solely or principally with compression-ignition engines; (b) oil or petrol pumps for use in the assembly or manufacture of engines for: (i) vehicles, having a power exceeding 7.46 kW, of 8701.10.00, 8701.90.11 or 8701.90.19; (ii) vehicles of 8701.30.00, 8701.90.90 or 8709.19.00	0%	0
8413.30.90	---Other	5%	3
8413.40.00	-Concrete pumps	5%	0
8413.50	-Other reciprocating positive displacement pumps:		
8413.50.10	---Specially designed for use in the mining or metallurgical industries, other than pulp pumps for use in conjunction with ore dressing machines	5%	0
8413.50.90	---Other	5%	0
8413.60	-Other rotary positive displacement pumps:		
8413.60.10	---Specially designed for use in the mining or metallurgical industries, other than pulp pumps for use in conjunction with ore dressing machines	5%	0
8413.60.90	---Other	5%	0
8413.70	-Other centrifugal pumps:		
8413.70.10	---Specially designed for use in the mining or metallurgical industries, other than pulp pumps for use in conjunction with ore dressing machines	5%	0
8413.70.90	---Other	5%	0
8413.8	-Other pumps, liquid elevators:		
8413.81	--Pumps:		
8413.81.10	---Specially designed for use in the mining or metallurgical industries, other than pulp pumps for use in conjunction with ore dressing machines	5%	0
8413.81.90	---Other	5%	0
8413.82.00	--Liquid elevators	5%	0
8413.9	-Parts:		
8413.91	--Of pumps:		
8413.91.10	---Specially designed for use in the mining or metallurgical industries, other than pulp pumps for use in conjunction with ore dressing machines	5%	0
8413.91.20	---Of pumps of 8413.30.10	0%	0
8413.91.90	---Other	5%	0
8413.92.00	--Of liquid elevators	5%	0
8414	AIR OR VACUUM PUMPS, AIR OR OTHER GAS COMPRESSORS AND FANS; VENTILATING OR RECYCLING HOODS INCORPORATING A FAN, WHETHER OR NOT FITTED WITH FILTERS:		
8414.10.00	-Vacuum pumps	5%	0
8414.20.00	-Hand- or foot-operated air pumps	0%	0
8414.30.00	-Compressors of a kind used in refrigerating equipment	5%	3
8414.40	-Air compressors mounted on a wheeled chassis for towing:		
8414.40.10	---Reciprocating or rotary, having a capacity not exceeding 3 m3 of free air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delivered per minute		
8414.40.20	---Reciprocating or rotary, having a capacity exceeding 3 m3 but not exceeding 25 m3 of free air delivered per minute	5%	0
8414.40.90	---Other	0%	0
8414.5	-Fans:		
8414.51.00	--Table, floor, wall, window, ceiling or roof fans, with a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of an output not exceeding 125 W	5%	0
8414.59	--Other:		
8414.59.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8414.59.90	---Other	5%	0
8414.60.00	-Hoods having a maximum horizontal side not exceeding 120 cm	5%	0
8414.80	-Other:		
8414.80.1	---Reciprocating or rotary air compressors or pumps, having a capacity not exceeding 3 m3 of free air delivered per minute:		
8414.80.11	----Aquarium aerators	0%	0
8414.80.19	----Other	5%	0
8414.80.20	---Reciprocating or rotary air compressors or pumps, having a capacity exceeding 3 m3 but not exceeding 25 m3 of free air delivered per minute	5%	0
8414.80.30	---Electro-mechanical tools for working in the hand,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NSA	5%	0
8414.80.90	---Other	0%	0
8414.90	-Parts:		
8414.90.10	---Of goods of 8414.20.00, 8414.40.90 or 8414.80.90	0%	0
8414.90.20	---Of goods of 8414.40.20 or 8414.80.20	5%	0
8414.90.90	---Other	5%	0
8415	AIR CONDITIONING MACHINES, COMPRISING A MOTOR-DRIVEN FAN AND ELEMENTS FOR CHANGING THE TEMPERATURE AND HUMIDITY, INCLUDING THOSE MACHINES IN WHICH THE HUMIDITY CANNOT BE SEPARATELY REGULATED:		
8415.10.00	-Window or wall types, self-contained or "split-system"	5%	0
8415.20.00	-Of a kind used for persons, in motor vehicles	5%	5
8415.8	-Other:		
8415.81.00	--Incorporating a refrigerating unit and a valve for reversal of the cooling/heat cycle (reversible heat pumps)	5%	0
8415.82.00	--Other, incorporating a refrigerating unit	5%	0
8415.83.00	--Not incorporating a refrigerating unit	5%	0
8415.90.00	-Parts	5%	0
8416	FURNACE BURNERS FOR LIQUID FUEL, FOR PULVERISED SOLID FUEL OR FOR GAS; MECHANICAL STOKERS, INCLUDING THEIR MECHANICAL GRATES, MECHANICAL ASH DISCHARGERS AND SIMILAR APPLIANCES:		
8416.10.00	-Furnace burners for liquid fuel	5%	0
8416.20.00	-Other furnace burners, including combination burners	5%	0
8416.30.00	-Mechanical stokers, including their mechanical grates, mechanical ash dischargers and similar appliances	5%	0
8416.90.00	-Parts	5%	0
8417	INDUSTRIAL OR LABORATORY FURNACES AND OVENS, INCLUDING INCINERATORS, NON-ELECTRIC:		
8417.10.00	-Furnaces and ovens for the roasting, melting or other heat-treatment of ores, pyrites or of metals	5%	0
8417.20.00	-Bakery ovens, including biscuit ovens	5%	0
8417.80.00	-Other	5%	0
8417.90.00	-Parts	5%	0
8418	REFRIGERATORS, FREEZERS AND OTHER REFRIGERATING OR FREEZING EQUIPMENT, ELECTRIC OR OTHER; HEAT PUMPS OTHER THAN AIR CONDITIONING MACHINES OF 8415:		
8418.10.00	-Combined refrigerator-freezers, fitted with separate external doors	5%	0
8418.2	-Refrigerators, household type:		
8418.21.00	--Compression-type	5%	0
8418.29.00	--Other	5%	0
8418.30.00	-Freezers of the chest type, not exceeding 800 L capacity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418.40.00	-Freezers of the upright type, not exceeding 900 L capacity	5%	0
8418.50.00	-Other furniture (chests, cabinets, display counters, show-cases and the like) for storage and display, incorporating refrigerating or freezing equipment	5%	0
8418.6	-Other refrigerating or freezing equipment; heat pumps:		
8418.61.00	--Heat pumps other than air conditioning machines of 8415	5%	0
8418.69.00	--Other	5%	0
8418.9	-Parts:		
8418.91.00	--Furniture designed to receive refrigerating or freezing equipment	5%	0
8418.99.00	--Other	5%	0
8419	MACHINERY, PLANT OR LABORATORY EQUIPMENT, WHETHER OR NOT ELECTRICALLY HEATED (EXCLUDING FURNACES, OVENS AND OTHER EQUIPMENT OF 8514), FOR THE TREATMENT OF MATERIALS BY A PROCESS INVOLVING A CHANGE OF TEMPERATURE SUCH AS HEATING, COOKING, ROASTING, DISTILLING, RECTIFYING, STERILISING, PASTEURISING, STEAMING, DRYING, EVAPORATING, VAPORISING, CONDENSING OR COOLING, OTHER THAN MACHINERY OR PLANT OF A KIND USED FOR DOMESTIC PURPOSES; INSTANTANEOUS OR STORAGE WATER HEATERS, NON-ELECTRIC:		
8419.1	-Instantaneous or storage water heaters, non-electric:		
8419.11.00	--Instantaneous gas water heaters	5%	0
8419.19.00	--Other	5%	0
8419.20.00	-Medical, surgical or laboratory sterilisers	5%	0
8419.3	-Dryers:		
8419.31.00	--For agricultural products	5%	0
8419.32.00	--For wood, paper pulp, paper or paperboard	5%	0
8419.39	--Other:		
8419.39.10	---Electro-mechanical tools for working in the hand,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5%	0
8419.39.90	---Other	5%	0
8419.40.00	-Distilling or rectifying plant	5%	0
8419.50	-Heat exchange units:		
8419.50.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8419.50.90	---Other	5%	0
8419.60.00	-Machinery for liquefying air or other gases	0%	0
8419.8	-Other machinery, plant and equipment:		
8419.81	--For making hot drinks or for cooking or heating food:		
8419.81.10	---Hot drink dispensing machines	5%	0
8419.81.90	---Other	5%	0
8419.89	--Other:		
8419.89.20	---Electro-mechanical tools for working in the hand,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5%	0
8419.89.90	---Other	5%	0
8419.90.00	-Parts	5%	0
8420	CALENDERING OR OTHER ROLLING MACHINES, OTHER THAN FOR METALS OR GLASS, AND CYLINDERS THEREFOR:		
8420.10.00	-Calendering or other rolling machines	0%	0
8420.9	-Parts:		
8420.91.00	--Cylinders	5%	0
8420.99.00	--Other	0%	0
8421	CENTRIFUGES, INCLUDING CENTRIFUGAL DRYERS;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OR GASES:		
8421.1	-Centrifuges, including centrifugal dryers:		
8421.11.00	--Cream separators	0%	0
8421.12.00	--Clothes-dryers	5%	0
8421.19.00	--Other	5%	0
8421.2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8421.21	--For filtering or purifying water:		
8421.21.10	---Filter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use with swimming pools	5%	0
8421.21.90	---Other	5%	0
8421.22.00	--For filtering or purifying beverages other than water	5%	0
8421.23.00	--Oil or petrol-filters for internal	5%	3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combustion engines		
8421.29.00	--Other	5%	0
8421.3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gases:		
8421.31.00	--Intake air filters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5%	3
8421.39.00	--Other	5%	0
8421.9	-Parts:		
8421.91.00	--Of centrifuges, including centrifugal dryers	5%	0
8421.99.00	--Other	5%	0
8422	DISH WASHING MACHINES; MACHINERY FOR CLEANING OR DRYING BOTTLES OR OTHER CONTAINERS; MACHINERY FOR FILLING, CLOSING, SEALING OR LABELLING BOTTLES, CANS, BOXES, BAGS OR OTHER CONTAINERS; MACHINERY FOR CAPSULING BOTTLES, JARS, TUBES AND SIMILAR CONTAINERS; OTHER PACKING OR WRAPPING MACHINERY (INCLUDING HEAT-SHRINK WRAPPING MACHINERY); MACHINERY FOR AERATING BEVERAGES:		
8422.1	-Dish washing machines:		
8422.11.00	--Of the household type	5%	0
8422.19.00	--Other	5%	0
8422.20.00	-Machinery for cleaning or drying bottles or other containers	5%	0
8422.30	-Machinery for filling, closing, sealing, or labelling bottles, cans, boxes, bags or other containers; machinery for capsuling bottles, jars, tubes and similar containers; machinery for aerating beverages:		
8422.30.10	---Electro-mechanical tools for working in the hand,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5%	0
8422.30.90	---Other	5%	0
8422.40	-Other packing or wrapping machinery (including heat-shrink wrapping machinery):		
8422.40.10	---Electro-mechanical tools for working in the hand,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5%	0
8422.40.90	---Other	0%	0
8422.90.00	-Parts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423	WEIGHING MACHINERY (EXCLUDING BALANCES OF A SENSITIVITY OF 5 CG OR BETTER), INCLUDING WEIGHT OPERATED COUNTING OR CHECKING MACHINES; WEIGHING MACHINE WEIGHTS OF ALL KINDS:		
8423.10.00	-Personal weighing machines, including baby scales; household scales	5%	0
8423.20.00	-Scales for continuous weighing of goods on conveyors	5%	0
8423.30.00	-Constant weight scales and scales for discharging a predetermined weight of material into a bag or container, including hopper scales	5%	0
8423.8	-Other weighing machinery:		
8423.81.00	--Having a maximum weighing capacity not exceeding 30 kg	5%	0
8423.82.00	--Having a maximum weighing capacity exceeding 30 kg but not exceeding 5 000 kg	5%	0
8423.89.00	--Other	5%	0
8423.90.00	-Weighing machine weights of all kinds; parts of weighing machinery	5%	0
8424	MECHANICAL APPLIANCES (WHETHER OR NOT HAND-OPERATED) FOR PROJECTING, DISPERSING OR SPRAYING LIQUIDS OR POWDERS; FIRE EXTINGUISHERS, WHETHER OR NOT CHARGED; SPRAY GUNS AND SIMILAR APPLIANCES; STEAM OR SAND BLASTING MACHINES AND SIMILAR JET PROJECTING MACHINES:		
8424.10.00	-Fire extinguishers, whether or not charged	5%	0
8424.20.00	-Spray guns and similar appliances	5%	0
8424.30	-Steam or sand blasting machines and similar jet projecting machines:		
8424.30.10	---Electro-mechanical tools for working in the hand,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5%	0
8424.30.90	---Other	5%	0
8424.8	-Other appliances:		
8424.81.00	--Agricultural or horticultural	5%	0
8424.89	--Other:		
8424.89.10	---Devices for washing motor vehicle windscreens, headlamps or windows	5%	5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424.89.40	---Electro-mechanical tools for working in the hand,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5%	0
8424.89.90	---Other	5%	0
8424.90	-Parts:		
8424.90.20	---Of goods of 8424.30.10	5%	0
8424.90.90	---Other	5%	5
8425	PULLEY TACKLE AND HOISTS OTHER THAN SKIP HOISTS; WINCHES AND CAPSTANS; JACKS:		
8425.1	-Pulley tackle and hoists other than skip hoists or hoists of a kind used for raising vehicles:		
8425.11.00	--Powered by electric motor	5%	0
8425.19.00	--Other	5%	0
8425.3	-Winches; capstans:		
8425.31.00	--Powered by electric motor	5%	0
8425.39.00	--Other	5%	0
8425.4	-Jacks; hoists of a kind used for raising vehicles:		
8425.41.00	--Built-in jacking systems of a type used in garages	5%	0
8425.42.00	--Other jacks and hoists, hydraulic	5%	0
8425.49.00	--Other	5%	0
8426	SHIPS' DERRICKS; CRANES, INCLUDING CABLE CRANES; MOBILE LIFTING FRAMES, STRADDLE CARRIERS AND WORKS TRUCKS FITTED WITH A CRANE:		
8426.1	-Overhead travelling cranes, transporter cranes, gantry cranes, bridge cranes, mobile lifting frames and straddle carriers:		
8426.11.00	--Overhead travelling cranes on fixed support	5%	0
8426.12.00	--Mobile lifting frames on tyres and straddle carriers	5%	0
8426.19.00	--Other	5%	0
8426.20.00	-Tower cranes	5%	0
8426.30.00	-Portal or pedestal jib cranes	5%	0
8426.4	-Other machinery, self-propelled:		
8426.41.00	--On tyres	5%	0
8426.49.00	--Other	5%	0
8426.9	-Other machinery:		
8426.91.00	--Designed for mounting on road vehicles	5%	0
8426.99.00	--Other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427	FORK-LIFT TRUCKS; OTHER WORKS TRUCKS FITTED WITH LIFTING OR HANDLING EQUIPMENT:		
8427.10.00	-Self-propelled trucks powered by an electric motor	5%	0
8427.20.00	-Other self-propelled trucks	5%	0
8427.90.00	-Other trucks	5%	0
8428	OTHER LIFTING, HANDLING, LOADING OR UNLOADING MACHINERY (FOR EXAMPLE, LIFTS, ESCALATORS, CONVEYORS, TELEFERICS):		
8428.10.00	-Lifts and skip hoists	5%	0
8428.20.00	-Pneumatic elevators and conveyors	5%	0
8428.3	-Other continuous-action elevators and conveyors, for goods or materials:		
8428.31.00	--Specially designed for underground use	5%	0
8428.32.00	--Other, bucket type	5%	0
8428.33.00	--Other, belt type	5%	0
8428.39.00	--Other	5%	0
8428.40.00	-Escalators and moving walkways	5%	0
8428.60.00	-Teleferics, chair-lifts, ski-draglines; traction mechanisms for funiculars	5%	0
8428.90.00	-Other machinery	5%	0
8429	SELF-PROPELLED BULLDOZERS, ANGLEDOZERS, GRADERS, LEVELLERS, SCRAPERS, MECHANICAL SHOVELS, EXCAVATORS, SHOVEL LOADERS, TAMPING MACHINES AND ROAD ROLLERS:		
8429.1	-Bulldozers and angledozers:		
8429.11.00	--Track laying	0%	0
8429.19.00	--Other	0%	0
8429.20.00	-Graders and levellers	5%	0
8429.30.00	-Scrapers	5%	0
8429.40.00	-Tamping machines and road rollers	5%	0
8429.5	-Mechanical shovels, excavators and shovel loaders:		
8429.51	--Front-end shovel loaders:		
8429.51.10	---Goods, as follows: (a) track laying; (b) underground loaders having a payload capacity exceeding 16 t	0%	0
8429.51.90	---Other	5%	0
8429.52	--Machinery with a 360o revolving superstructure: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429.52.10	---Goods, as follows: (a) electric walking draglines; (b) excavators of the track laying or wheeled type having an operating weight exceeding 12 t; (c) mechanical shovels having a shovel capacity exceeding 5 m3	0%	0
8429.52.90	---Other	5%	0
8429.59	--Other:		
8429.59.10	---Mechanical shovels having a shovel capacity exceeding 5 m3	0%	0
8429.59.90	---Other	5%	0
8430	OTHER MOVING, GRADING, LEVELLING, SCRAPING, EXCAVATING, TAMPING, COMPACTING, EXTRACTING OR BORING MACHINERY, FOR EARTH, MINERALS OR ORES; PILE-DRIVERS AND PILE-EXTRACTORS; SNOW-PLOUGHS AND SNOW-BLOWERS:		
8430.10.00	-Pile-drivers and pile-extractors	0%	0
8430.20.00	-Snow-ploughs and snow-blowers	0%	0
8430.3	-Coal or rock cutters and tunnelling machinery:		
8430.31.00	--Self-propelled	0%	0
8430.39.00	--Other	0%	0
8430.4	-Other boring or sinking machinery:		
8430.41.00	--Self-propelled	5%	0
8430.49.00	--Other	5%	0
8430.50.00	-Other machinery, self-propelled	5%	0
8430.6	-Other machinery, not self-propelled:		
8430.61.00	--Tamping or compacting machinery	5%	0
8430.69	--Other:		
8430.69.10	---Scrapers	5%	0
8430.69.90	---Other	0%	0
8431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MACHINERY OF 8425 TO 8430:		
8431.10.00	-Of machinery of 8425	5%	0
8431.20.00	-Of machinery of 8427	5%	0
8431.3	-Of machinery of 8428:		
8431.31.00	--Of lifts, skip hoists or escalators	5%	0
8431.39.00	--Other	5%	0
8431.4	-Of machinery of 8426, 8429 or 8430:		
8431.41.00	--Buckets, shovels, grabs and grips	5%	0
8431.42.00	--Bulldozer or angledozer blades	5%	0
8431.43.00	--Parts for boring or sinking machinery of 8430.41.00 or 8430.49.00	5%	0
8431.49	--Other:		
8431.49.10	---Of machinery of 8430.3	0%	0
8431.49.90	---Other	5%	0
8432	AGRICULTURAL, HORTICULTURAL OR FORESTRY MACHINERY FOR SOIL PREPARATION OR CULTIVATION; LAWN OR SPORTS-GROUND ROLLERS:		
8432.10.00	-Ploughs	0%	0
8432.2	-Harrows, scarifiers, cultivators, weeders and hoes:		
8432.21.00	--Disc harrows	0%	0
8432.29.00	--Other	0%	0
8432.30.00	-Seeders, planters and transplanters	0%	0
8432.40.00	-Manure spreaders and fertilizer distributors	0%	0
8432.80.00	-Other machinery	0%	0
8432.90.00	-Parts	0%	0
8433	HARVESTING OR THRESHING MACHINERY, INCLUDING STRAW OR FODDER BALERS; GRASS OR HAY MOWERS; MACHINES FOR CLEANING, SORTING OR GRADING EGGS, FRUIT OR OTHER AGRICULTURAL PRODUCE, OTHER THAN MACHINERY OF 8437:		
8433.1	-Mowers for lawns, parks or sports-grounds:		
8433.11.00	--Powered, with the cutting device rotating in a horizontal plane	5%	0
8433.19.00	--Other	5%	0
8433.20.00	-Other mowers, including cutter bars for tractor mounting	5%	0
8433.30.00	-Other haymaking machinery	5%	0
8433.40	-Straw or fodder balers, including pick-up balers:		
8433.40.10	---Round bale hay balers	0%	0
8433.40.90	---Other	5%	0
8433.5	-Other harvesting machinery; threshing machinery:		
8433.51.00	--Combine harvester-threshers	0%	0
8433.52.00	--Other threshing machinery	5%	0
8433.53.00	--Root or tuber harvesting machines	5%	0
8433.59	--Other:		
8433.59.10	---Goods, as follows: (a) cotton picking machines; (b) green maize harvesters; (c) tree shakers	0%	0
8433.59.90	---Other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433.60.00	-Machines for cleaning, sorting or grading eggs, fruit or other agricultural produce	5%	0
8433.90	-Parts:		
8433.90.10	---Of machines of 8433.51.00	0%	0
8433.90.90	---Other	5%	0
8434	MILKING MACHINES AND DAIRY MACHINERY:		
8434.10.00	-Milking machines	5%	0
8434.20.00	-Dairy machinery	5%	0
8434.90.00	-Parts	5%	0
8435	PRESSES, CRUSHERS AND SIMILAR MACHINERY USED IN THE MANUFACTURE OF WINE, CIDER, FRUIT JUICES OR SIMILAR BEVERAGES:		
8435.10.00	-Machinery	0%	0
8435.90.00	-Parts	0%	0
8436	OTHER AGRICULTURAL, HORTICULTURAL, FORESTRY, POULTRY-KEEPING OR BEE-KEEPING MACHINERY, INCLUDING GERMINATION PLANT FITTED WITH MECHANICAL OR THERMAL EQUIPMENT; POULTRY INCUBATORS AND BROODERS:		
8436.10.00	-Machinery for preparing animal feeding stuffs	5%	0
8436.2	-Poultry-keeping machinery; poultry incubators and brooders:		
8436.21.00	--Poultry incubators and brooders	5%	0
8436.29.00	--Other	5%	0
8436.80	-Other machinery:		
8436.80.10	---Goods, as follows: (a) tree fellers; (b) tree harvesters	0%	0
8436.80.90	---Other	5%	0
8436.9	-Parts:		
8436.91.00	--Of poultry-keeping machinery or poultry incubators and brooders	5%	0
8436.99.00	--Other	5%	0
8437	MACHINES FOR CLEANING, SORTING OR GRADING SEED, GRAIN OR DRIED LEGUMINOUS VEGETABLES; MACHINERY USED IN THE MILLING INDUSTRY OR FOR THE WORKING OF CEREALS OR DRIED LEGUMINOUS VEGETABLES, OTHER THAN FARM-TYPE MACHINERY:		
8437.10.00	-Machines for cleaning, sorting or grading seed, grain or dried leguminous vegetables	5%	0
8437.80.00	-Other machinery	0%	0
8437.90.00	-Parts	0%	0
8438	MACHINERY,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FOR THE INDUSTRIAL PREPARATION OR MANUFACTURE OF FOOD OR DRINK, OTHER THAN MACHINERY FOR THE EXTRACTION OR PREPARATION OF ANIMAL OR FIXED VEGETABLE FATS OR OILS:		
8438.10	-Bakery machinery and machinery for the manufacture of macaroni, spaghetti or similar products:		
8438.10.10	---For the manufacture of macaroni, spaghetti or similar products	0%	0
8438.10.90	---Other	5%	0
8438.20.00	-Machinery for the manufacture of confectionery, cocoa or chocolate	5%	0
8438.30.00	-Machinery for sugar manufacture	5%	0
8438.40.00	-Brewery machinery	5%	0
8438.50.00	-Machinery for the preparation of meat or poultry	5%	0
8438.60.00	-Machinery for the preparation of fruits, nuts or vegetables	5%	0
8438.80.00	-Other machinery	5%	0
8438.90	-Parts:		
8438.90.10	---Of machinery of 8438.10, 8438.20.00, 8438.30.00 or 8438.40.00	5%	0
8438.90.90	---Other	5%	0
8439	MACHINERY FOR MAKING PULP OF FIBROUS CELLULOSIC MATERIAL OR FOR MAKING OR FINISHING PAPER OR PAPERBOARD:		
8439.10.00	-Machinery for making pulp of fibrous cellulosic material	0%	0
8439.20.00	-Machinery for making paper or paperboard	0%	0
8439.30.00	-Machinery for finishing paper or paperboard	5%	0
8439.9	-Parts:		
8439.91.00	--Of machinery for making pulp of fibrous cellulosic material	0%	0
8439.99.00	--Other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440	BOOK-BINDING MACHINERY, INCLUDING BOOK-SEWING MACHINES:		
8440.10.00	-Machinery	0%	0
8440.90.00	-Parts	0%	0
8441	OTHER MACHINERY FOR MAKING UP PAPER PULP, PAPER OR PAPERBOARD, INCLUDING CUTTING MACHINES OF ALL KINDS:		
8441.10	-Cutting machines:		
8441.10.10	---Machines, as follows: (a) sheeters (machines for cutting out sheets); (b) slitters; (c) slitter-rewinders	5%	0
8441.10.90	---Other	0%	0
8441.20.00	-Machines for making bags, sacks or envelopes	0%	0
8441.30.00	-Machines for making cartons, boxes, cases, tubes, drums or similar containers, other than by moulding	0%	0
8441.40.00	-Machines for moulding articles in paper pulp, paper or paperboard	0%	0
8441.80	-Other machinery:		
8441.80.10	---Rewinders	5%	0
8441.80.90	---Other	0%	0
8441.90	-Parts:		
8441.90.10	---Of machines of 8441.10.10 and 8441.80.10	5%	0
8441.90.90	---Other	0%	0
8442	MACHINERY, APPARATUS AND EQUIPMENT (OTHER THAN THE MACHINE-TOOLS OF8456 TO 8465), FOR PREPARING OR MAKING PLATES, CYLINDERS OR OTHER PRINTING COMPONENTS; PLATES, CYLINDERS AND OTHER PRINTING COMPONENTS; PLATES, CYLINDERS AND LITHOGRAPHIC STONES, PREPARED FOR PRINTING PURPOSES (FOR EXAMPLE, PLANED, GRAINED OR POLISHED):		
8442.30.00	-Machinery, apparatus and equipment	0%	0
8442.40.00	-Parts of the foregoing machinery, apparatus or equipment	0%	0
8442.50.00	-Plates, cylinders and other printing components; plates, cylinders and lithographic stones, prepared for printing purposes (for example, planed, grained or polished)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443	PRINTING MACHINERY USED FOR PRINTING BY MEANS OF PLATES, CYLINDERS AND OTHER PRINTING COMPONENTS OF 8442; OTHER PRINTERS, COPYING MACHINES AND FACSIMILE MACHINES, WHETHER OR NOT COMBINE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8443.1	-Printing machinery used for printing by means of plates, cylinders and other printing components of 8442:		
8443.11.00	--Offset printing machinery, reel-fed	0%	0
8443.12.00	--Offset printing machinery, sheet-fed, office type (using sheets with one side not exceeding 22 cm and the other side not exceeding 36 cm in the unfolded state)	0%	0
8443.13.00	--Other offset printing machinery	0%	0
8443.14.00	--Letterpress printing machinery, reel-fed, excluding flexographic printing	0%	0
8443.15.00	--Letterpress printing machinery, other than reel-fed, excluding flexographic printing	0%	0
8443.16.00	--Flexographic printing machinery	0%	0
8443.17.00	--Gravure printing machinery	0%	0
8443.19	--Other:		
8443.19.10	---Hot stamping machines	5%	0
8443.19.90	---Other	0%	0
8443.3	-Other printers, copying machines and facsimile machines, whether or not combined:		
8443.31.00	--Machines which perform two or more of the functions of printing, copying or facsimile transmission, capable of connecting to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or to a network	0%	0
8443.32.00	--Other, capable of connecting to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or to a network	0%	0
8443.39.00	--Other	0%	0
8443.9	-Parts and accessories:		
8443.91	--Parts and accessories of printing machinery used for printing by means of plates, cylinders and other printing components of 8442:		
8443.91.10	---Of machines of 8443.19.10	5%	0
8443.91.90	---Other	0%	0
8443.99.00	--Other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444.00.00	MACHINES FOR EXTRUDING, DRAWING, TEXTURING OR CUTTING MAN-MADE TEXTILE MATERIALS	0%	0
8445	MACHINES FOR PREPARING TEXTILE FIBRES; SPINNING, DOUBLING OR TWISTING MACHINES AND OTHER MACHINERY FOR PRODUCING TEXTILE YARNS; TEXTILE REELING OR WINDING (INCLUDING WEFT-WINDING) MACHINES AND MACHINES FOR PREPARING TEXTILE YARNS FOR USE ON THE MACHINES OF 8446 OR 8447:		
8445.1	-Machines for preparing textile fibres:		
8445.11.00	--Carding machines	0%	0
8445.12.00	--Combing machines	0%	0
8445.13.00	--Drawing or roving machines	0%	0
8445.19.00	--Other	0%	0
8445.20.00	-Textile spinning machines	0%	0
8445.30.00	-Textile doubling or twisting machines	0%	0
8445.40.00	-Textile winding (including weft-winding) or reeling machines	0%	0
8445.90.00	-Other	0%	0
8446	WEAVING MACHINES (LOOMS):		
8446.10.00	-For weaving fabrics of a width not exceeding 30 cm	0%	0
8446.2	-For weaving fabrics of a width exceeding 30 cm, shuttle type:		
8446.21.00	--Power looms	0%	0
8446.29.00	--Other	0%	0
8446.30.00	-For weaving fabrics of a width exceeding 30 cm, shuttleless type	0%	0
8447	KNITTING MACHINES, STITCH-BONDING MACHINES AND MACHINES FOR MAKING GIMPED YARN, TULLE, LACE, EMBROIDERY, TRIMMINGS, BRAID OR NET AND MACHINES FOR TUFTING:		
8447.1	-Circular knitting machines:		
8447.11.00	--With cylinder diameter not exceeding 165 mm	0%	0
8447.12.00	--With cylinder diameter exceeding 165 mm	0%	0
8447.20.00	-Flat knitting machines; stitch-bonding machines	0%	0
8447.90.00	-Other	5%	0
8448	AUXILIARY MACHINERY FOR USE WITH MACHINES OF 8444.00.00, 8445, 8446 OR 8447 (FOR EXAMPLE, DOBBIES, JACQUARDS, AUTOMATIC STOP MOTIONS, SHUTTLE CHANGING MECHANISMS); PARTS AND ACCESSORIE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MACHINES OF THIS HEADING OR OF 8444.00.00, 8445, 8446 OR 8447 (FOR EXAMPLE, SPINDLES AND SPINDLE FLYERS, CARD CLOTHING, COMBS, EXTRUDING NIPPLES, SHUTTLES, HEALDS AND HEALD-FRAMES, HOSIERY NEEDLES):		
8448.1	-Auxiliary machinery for machines of 8444.00.00, 8445, 8446 or 8447:		
8448.11.00	--Dobbies and Jacquards; card reducing, copying, punching or assembling machines for use therewith	0%	0
8448.19.00	--Other	0%	0
8448.20.00	-Parts and accessories of machines of 8444.00.00 or of their auxiliary machinery	0%	0
8448.3	-Parts and accessories of machines of 8445 or of their auxiliary machinery:		
8448.31.00	--Card clothing	0%	0
8448.32.00	--Of machines for preparing textile fibres, other than card clothing	0%	0
8448.33.00	--Spindles, spindle flyers, spinning rings and ring travellers	0%	0
8448.39.00	--Other	0%	0
8448.4	-Parts and accessories of weaving machines (looms) or of their auxiliary machinery:		
8448.42.00	--Reeds for looms, healds and heald-frames	0%	0
8448.49.00	--Other	0%	0
8448.5	-Parts and accessories of machines of 8447 or of their auxiliary machinery:		
8448.51.00	--Sinkers, needles and other articles used in forming stitches	0%	0
8448.59.00	--Other	0%	0
8449.00.00	MACHINERY FOR THE MANUFACTURE OR FINISHING OF FELT OR NONWOVENS IN THE PIECE OR IN SHAPES, INCLUDING MACHINERY FOR MAKING FELT HATS; BLOCKS FOR MAKING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HATS		
8450	HOUSEHOLD OR LAUNDRY-TYPE WASHING MACHINES, INCLUDING MACHINES WHICH BOTH WASH AND DRY:		
8450.1	-Machines, each of a dry linen capacity not exceeding 10 kg:		
8450.11.00	--Fully-automatic machines	5%	0
8450.12.00	--Other machines, with built-in centrifugal drier	5%	0
8450.19.00	--Other	5%	0
8450.20.00	-Machines, each of a dry linen capacity exceeding 10 kg	5%	0
8450.90.00	-Parts	5%	0
8451	MACHINERY (OTHER THAN MACHINES OF 8450) FOR WASHING, CLEANING, WRINGING, DRYING, IRONING, PRESSING (INCLUDING FUSING PRESSES), BLEACHING, DYEING, DRESSING, FINISHING, COATING OR IMPREGNATING TEXTILE YARNS, FABRICS OR MADE UP TEXTILE ARTICLES AND MACHINES FOR APPLYING PASTE TO THE BASE FABRIC OR OTHER SUPPORT USED IN THE MANUFACTURE OF FLOOR COVERINGS SUCH AS LINOLEUM; MACHINES FOR REEELING, UNREELING, FOLDING, CUTTING OR PINKING TEXTILE FABRICS:		
8451.10.00	-Dry-cleaning machines	5%	0
8451.2	-Drying machines:		
8451.21.00	--Each of a dry linen capacity not exceeding 10 kg	5%	0
8451.29.00	--Other	5%	0
8451.30.00	-Ironing machines and presses (including fusing presses)	0%	0
8451.40.00	-Washing, bleaching or dyeing machines	0%	0
8451.50.00	-Machines for reeling, unreeling, folding, cutting or pinking textile fabrics	0%	0
8451.80.00	-Other machinery	5%	0
8451.90.00	-Parts	5%	0
8452	SEWING MACHINES, OTHER THAN BOOK-SEWING MACHINES OF 8440; FURNITURE, BASES AND COVERS SPECIALLY DESIGNED FOR SEWING MACHINES; SEWING MACHINE NEEDLES:		
8452.10.00	-Sewing machines of the household type	0%	0
8452.2	-Other sewing machines:		
8452.21.00	--Automatic units	0%	0
8452.29.00	--Other	0%	0
8452.30.00	-Sewing machine needles	0%	0
8452.90.00	-Furniture, bases and covers for sewing machines and parts thereof; other parts of sewing machines	0%	0
8453	MACHINERY FOR PREPARING, TANNING OR WORKING HIDES, SKINS OR LEATHER OR FOR MAKING OR REPAIRING FOOTWEAR OR OTHER ARTICLES OF HIDES, SKINS OR LEATHER, OTHER THAN SEWING MACHINES:		
8453.10.00	-Machinery for preparing, tanning or working hides, skins or leather	0%	0
8453.20.00	-Machinery for making or repairing footwear	0%	0
8453.80.00	-Other machinery	0%	0
8453.90.00	-Parts	0%	0
8454	CONVERTERS, LADLES, INGOT MOULDS AND CASTING MACHINES, OF A KIND USED IN METALLURGY OR IN METAL FOUNDRIES:		
8454.10.00	-Converters	5%	0
8454.20.00	-Ingot moulds and ladles	5%	0
8454.30.00	-Casting machines	5%	0
8454.90.00	-Parts	5%	0
8455	METAL-ROLLING MILLS AND ROLLS THEREFOR:		
8455.10.00	-Tube mills	0%	0
8455.2	-Other rolling mills:		
8455.21.00	--Hot or combination hot and cold	0%	0
8455.22.00	--Cold	0%	0
8455.30.00	-Rolls for rolling mills	0%	0
8455.90.00	-Other parts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456	MACHINE-TOOLS FOR WORKING ANY MATERIAL BY REMOVAL OF MATERIAL, BY LASER OR OTHER LIGHT OR PHOTON BEAM, ULTRASONIC, ELECTRO-DISCHARGE, ELECTRO-CHEMICAL, ELECTRON BEAM, IONIC-BEAM OR PLASMA ARC PROCESSES; WATER-JET CUTTING MACHINES:		
8456.10.00	-Operated by laser or other light or photon beam processes	0%	0
8456.20.00	-Operated by ultrasonic processes	0%	0
8456.30.00	-Operated by electro-discharge processes	0%	0
8456.90	-Other:		
8456.90.10	---Water-jet cutting machines	5%	0
8456.90.90	---Other	0%	0
8457	MACHINING CENTRES, UNIT CONSTRUCTION MACHINES (SINGLE STATION) AND MULTI-STATION TRANSFER MACHINES, FOR WORKING METAL:		
8457.10.00	-Machining centres	0%	0
8457.20.00	-Unit construction machines (single station)	0%	0
8457.30.00	-Multi-station transfer machines	0%	0
8458	LATHES (INCLUDING TURNING CENTRES) FOR REMOVING METAL:		
8458.1	-Horizontal lathes:		
8458.11.00	--Numerically controlled	0%	0
8458.19.00	--Other	0%	0
8458.9	-Other lathes:		
8458.91.00	--Numerically controlled	0%	0
8458.99.00	--Other	0%	0
8459	MACHINE-TOOLS (INCLUDING WAY-TYPE UNIT HEAD MACHINES) FOR DRILLING, BORING, MILLING, THREADING OR TAPPING BY REMOVING METAL, OTHER THAN LATHES (INCLUDING TURNING CENTRES) OF 8458:		
8459.10.00	-Way-type unit head machines	0%	0
8459.2	-Other drilling machines:		
8459.21.00	--Numerically controlled	0%	0
8459.29	--Other:		
8459.29.10	---Power operated	0%	0
8459.29.90	---Other	5%	0
8459.3	-Other boring-milling machines:		
8459.31.00	--Numerically controlled	0%	0
8459.39.00	--Other	0%	0
8459.40.00	-Other boring machines	0%	0
8459.5	-Milling machines, knee-type:		
8459.51.00	--Numerically controlled	0%	0
8459.59.00	--Other	0%	0
8459.6	-Other milling machines:		
8459.61.00	--Numerically controlled	0%	0
8459.69.00	--Other	0%	0
8459.70.00	-Other threading or tapping machines	0%	0
8460	MACHINE-TOOLS FOR DEBURRING, SHARPENING, GRINDING, HONING, LAPPING, POLISHING OR OTHERWISE FINISHING METAL OR CERMETS BY MEANS OF GRINDING STONES, ABRASIVES OR POLISHING PRODUCTS, OTHER THAN GEAR CUTTING, GEAR GRINDING OR GEAR FINISHING MACHINES OF 8461:		
8460.1	-Flat-surface grinding machines, in which the positioning in any one axis can be set up to an accuracy of at least 0.01 mm:		
8460.11.00	--Numerically controlled	0%	0
8460.19.00	--Other	0%	0
8460.2	-Other grinding machines, in which the positioning in any one axis can be set up to an accuracy of at least 0.01 mm:		
8460.21.00	--Numerically controlled	0%	0
8460.29.00	--Other	0%	0
8460.3	-Sharpening (tool or cutter grinding) machines:		
8460.31.00	--Numerically controlled	0%	0
8460.39	--Other:		
8460.39.10	---Power operated	0%	0
8460.39.90	---Other	5%	0
8460.40	-Honing or lapping machines:		
8460.40.10	---Power operated	0%	0
8460.40.90	---Other	5%	0
8460.90.00	-Other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461	MACHINE-TOOLS FOR PLANING, SHAPING, SLOTTING, BROACHING, GEAR CUTTING, GEAR GRINDING OR GEAR FINISHING, SAWING, CUTTING-OFF AND OTHER MACHINE-TOOLS WORKING BY REMOVING METAL OR CERMET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8461.20.00	-Shaping or slotting machines	0%	0
8461.30.00	-Broaching machines	0%	0
8461.40.00	-Gear cutting, gear grinding or gear finishing machines	0%	0
8461.50.00	-Sawing or cutting-off machines	0%	0
8461.90.00	-Other	0%	0
8462	MACHINE-TOOLS (INCLUDING PRESSES) FOR WORKING METAL BY FORGING, HAMMERING OR DIE-STAMPING; MACHINE-TOOLS (INCLUDING PRESSES) FOR WORKING METAL BY BENDING, FOLDING, STRAIGHTENING, FLATTENING, SHEARING, PUNCHING OR NOTCHING; PRESSES FOR WORKING METAL OR METAL CARBIDES, NOT SPECIFIED ABOVE:		
8462.10	-Forging or die-stamping machines (including presses) and hammers:		
8462.10.10	---Power operated	0%	0
8462.10.90	---Other	5%	0
8462.2	-Bending, folding, straightening or flattening machines (including presses):		
8462.21.00	--Numerically controlled	0%	0
8462.29	--Other:		
8462.29.10	---Power operated	0%	0
8462.29.90	---Other	5%	0
8462.3	-Shearing machines (including presses), other than combined punching and shearing machines:		
8462.31.00	--Numerically controlled	0%	0
8462.39	--Other:		
8462.39.10	---Power operated	0%	0
8462.39.90	---Other	5%	0
8462.4	-Punching or notching machines (including presses), including combined punching and shearing machines:		
8462.41.00	--Numerically controlled	0%	0
8462.49	--Other:		
8462.49.10	---Power operated	0%	0
8462.49.90	---Other	5%	0
8462.9	-Other:		
8462.91.00	--Hydraulic presses	0%	0
8462.99.00	--Other	0%	0
8463	OTHER MACHINE-TOOLS FOR WORKING METAL OR CERMETS, WITHOUT REMOVING MATERIAL:		
8463.10.00	-Draw-benches for bars, tubes, profiles, wire or the like	0%	0
8463.20.00	-Thread rolling machines	0%	0
8463.30.00	-Machines for working wire	0%	0
8463.90.00	-Other	0%	0
8464	MACHINE-TOOLS FOR WORKING STONE, CERAMICS, CONCRETE, ASBESTOS-CEMENT OR LIKE MINERAL MATERIALS OR FOR COLD WORKING GLASS:		
8464.10.00	-Sawing machines	5%	0
8464.20.00	-Grinding or polishing machines	5%	0
8464.90.00	-Other	5%	0
8465	MACHINE-TOOLS (INCLUDING MACHINES FOR NAILING, STAPLING, GLUEING OR OTHERWISE ASSEMBLING) FOR WORKING WOOD, CORK, BONE, HARD RUBBER, HARD PLASTICS OR SIMILAR HARD MATERIALS:		
8465.10.00	-Machines which can carry out different types of machining operations without tool change between such operations	5%	0
8465.9	-Other:		
8465.91.00	--Sawing machines	5%	0
8465.92.00	--Planing, milling or moulding (by cutting) machines	5%	0
8465.93.00	--Grinding, sanding or polishing machines	5%	0
8465.94.00	--Bending or assembling machines	0%	0
8465.95.00	--Drilling or morticing machines	0%	0
8465.96.00	--Splitting, slicing or paring machines	0%	0
8465.99.00	--Other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466	PARTS AND ACCESSORIE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MACHINES OF 8456 TO 8465, INCLUDING WORK OR TOOL HOLDERS, SELF-OPENING DIEHEADS, DIVIDING HEADS AND OTHER SPECIAL ATTACHMENTS FOR MACHINE-TOOLS; TOOL HOLDERS FOR ANY TYPE OF TOOL FOR WORKING IN THE HAND:		
8466.10.00	-Tool holders and self-opening dieheads	0%	0
8466.20.00	-Work holders	0%	0
8466.30.00	-Dividing heads and other special attachments for machine-tools	0%	0
8466.9	-Other:		
8466.91.00	--For machines of 8464	0%	0
8466.92.00	--For machines of 8465	5%	0
8466.93	--For machines of 8456 to 8461:		
8466.93.10	---For water-jet cutting machines	5%	0
8466.93.90	---Other	0%	0
8466.94.00	--For machines of 8462 or 8463	0%	0
8467	TOOLS FOR WORKING IN THE HAND, PNEUMATIC, HYDRAULIC OR WITH SELF-CONTAINED ELECTRIC OR NON-ELECTRIC MOTOR:		
8467.1	-Pneumatic:		
8467.11.00	--Rotary type (including combined rotary percussion)	0%	0
8467.19.00	--Other	0%	0
8467.2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8467.21.00	--Drills of all kinds	5%	0
8467.22.00	--Saws	5%	0
8467.29.00	--Other	5%	0
8467.8	-Other tools:		
8467.81.00	--Chain saws	5%	0
8467.89.00	--Other	0%	0
8467.9	-Parts:		
8467.91.00	--Of chain saws	5%	0
8467.92.00	--Of pneumatic tools	0%	0
8467.99	--Other:		
8467.99.10	---Of goods of 8467.21.00, 8467.22.00 or 8467.29.00	5%	0
8467.99.90	---Other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468	MACHINERY AND APPARATUS FOR SOLDERING, BRAZING OR WELDING, WHETHER OR NOT CAPABLE OF CUTTING, OTHER THAN THOSE 8515; GAS-OPERATED SURFACE TEMPERING MACHINES AND APPLIANCES:		
8468.10.00	-Hand-held blow pipes	0%	0
8468.20	-Other gas-operated machinery and apparatus:		
8468.20.10	---For working metal, incorporating a computer control	0%	0
8468.20.90	---Other	5%	0
8468.80.00	-Other machinery and apparatus	5%	0
8468.90.00	-Parts	5%	0
8469.00.00	TYPEWRITERS OTHER THAN PRINTERS OF 8443; WORD-PROCESSING MACHINES	0%	0
8470	CALCULATING MACHINES AND POCKET-SIZE DATA RECORDING, REPRODUCING AND DISPLAYING MACHINES WITH CALCULATING FUNCTIONS; ACCOUNTING MACHINES, POSTAGE-FRANKING MACHINES, TICKET-ISSUING MACHINES AND SIMILAR MACHINES, INCORPORATING A CALCULATING DEVICE; CASH REGISTERS:		
8470.10.00	-Electronic calculators capable of operation without an external source of electric power and pocket-size data recording, reproducing and displaying machines with calculating functions	0%	0
8470.2	-Other electronic calculating machines:		
8470.21.00	--Incorporating a printing device	0%	0
8470.29.00	--Other	0%	0
8470.30.00	-Other calculating machines	0%	0
8470.50.00	-Cash registers	0%	0
8470.90.00	-Other	0%	0
8471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UNITS THEREOF; MAGNETIC OR OPTICAL READERS, MACHINES FOR TRANSCRIBING DATA ONTO DATA MEDIA IN CODED FORM AND MACHINES FOR PROCESSING SUCH DATA,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of 8469		
8473.2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achines of 8470:		
8473.21.00	--Of the electronic calculating machines of 8470.10.00, 8470.21.00 or 8470.29.00	0%	0
8473.29.00	--Other	0%	0
8473.30.00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achines of 8471	0%	0
8473.40.00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achines of 8472	0%	0
8473.50.00	-Parts and accessories equally suitable for use with machines of two or more of 8469 to 8472	0%	0
8474	MACHINERY FOR SORTING, SCREENING, SEPARATING, WASHING, CRUSHING, GRINDING, MIXING OR KNEADING EARTH, STONE, ORES OR OTHER MINERAL SUBSTANCES, IN SOLID (INCLUDING POWDER OR PASTE) FORM; MACHINERY FOR AGGLOMERATING, SHAPING OR MOULDING SOLID MINERAL FUELS, CERAMIC PASTE, UNHARDENED CEMENTS, PLASTERING MATERIALS OR OTHER MINERAL PRODUCTS IN POWDER OR PASTE FORM; MACHINES FOR FORMING FOUNDRY MOULDS OF SAND:		
8474.10.00	-Sorting, screening, separating or washing machines	5%	0
8474.20.00	-Crushing or grinding machines	5%	0
8474.3	-Mixing or kneading machines:		
8474.31.00	--Concrete or mortar mixers	5%	0
8474.32.00	--Machines for mixing mineral substances with bitumen	5%	0
8474.39.00	--Other	5%	0
8474.80.00	-Other machinery	5%	0
8474.90.00	-Parts	5%	0
8475	MACHINES FOR ASSEMBLING ELECTRIC OR ELECTRONIC LAMPS, TUBES OR VALVES OR FLASHBULBS, IN GLASS ENVELOPES; MACHINES FOR MANUFACTURING OR HOT WORKING GLASS OR GLASSWARE: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471.30.00	-Portable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weighing not more than 10 kg, consisting of at least a central processing unit, a keyboard and a display	0%	0
8471.4	-Othe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8471.41.00	--Comprising in the same housing at least a central processing unit and an input and output unit, whether or not combined	0%	0
8471.49.00	--Other, presented in the form of systems	0%	0
8471.50.00	-Processing units other than those of 8471.41.00 and 8471.49.00, whether or not containing in the same housing one or two of the following types of unit: storage units, input units, output units	0%	0
8471.60.00	-Input or output units, whether or not containing storage units in the same housing	0%	0
8471.70.00	-Storage units	0%	0
8471.80.00	-Other units of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0%	0
8471.90.00	-Other	0%	0
8472	OTHER OFFICE MACHINES (FOR EXAMPLE, HECTOGRAPH OR STENCIL DUPLICATING MACHINES, ADDRESSING MACHINES, AUTOMATIC BANKNOTE DISPENSERS, COIN-SORTING MACHINES, COIN-COUNTING OR WRAPPING MACHINES, PENCIL-SHARPENING MACHINES, PERFORATING OR STAPLING MACHINES):		
8472.10.00	-Duplicating machines	0%	0
8472.30.00	-Machines for sorting or folding mail or for inserting mail in envelopes or bands, machines for opening, closing or sealing mail and machines for affixing or cancelling postage stamps	0%	0
8472.90	-Other:		
8472.90.10	---Stapling machines	5%	0
8472.90.90	---Other	0%	0
8473	PARTS AND ACCESSORIES (OTHER THAN COVERS, CARRYING CASES AND THE LIKE)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MACHINES OF 8469 TO 8472:		
8473.10.00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achines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475.10.00	-Machines for assembling electric or electronic lamps, tubes or valves or flash-bulbs, in glass envelopes	0%	0
8475.2	-Machines for manufacturing or hot working glass or glassware:		
8475.21.00	--Machines for making optical fibres and preforms thereof	0%	0
8475.29.00	--Other	5%	0
8475.90.00	-Parts	5%	0
8476	AUTOMATIC GOODS-VENDING MACHINES (FOR EXAMPLE, POSTAGE STAMP, CIGARETTE, FOOD OR BEVERAGE MACHINES), INCLUDING MONEY-CHANGING MACHINES:		
8476.2	-Automatic beverage-vending machines:		
8476.21.00	--Incorporating heating or refrigerating devices	5%	0
8476.29.00	--Other	5%	0
8476.8	-Other machines:		
8476.81.00	--Incorporating heating or refrigerating devices	5%	0
8476.89.00	--Other	5%	0
8476.90.00	-Parts	5%	0
8477	MACHINERY FOR WORKING RUBBER OR PLASTICS OR FOR THE MANUFACTURE OF PRODUCTS FROM THESE MATERIAL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8477.10.00	-Injection-moulding machines	5%	0
8477.20.00	-Extruders	5%	0
8477.30.00	-Blow moulding machines	5%	0
8477.40.00	-Vacuum moulding machines and other thermoforming machines	5%	0
8477.5	-Other machinery for moulding or otherwise forming:		
8477.51.00	--For moulding or retreading pneumatic tyres or for moulding or otherwise forming inner tubes	5%	0
8477.59.00	--Other	5%	0
8477.80.00	-Other machinery	5%	0
8477.90.00	-Parts	5%	0
8478	MACHINERY FOR PREPARING OR MAKING UP TOBACCO,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8478.10.00	-Machinery	0%	0
8478.90.00	-Parts	0%	0
8479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8479.10.00	-Machinery for public works, building or the like	5%	0
8479.20.00	-Machinery for the extraction or preparation of animal or fixed vegetable fats or oils	0%	0
8479.30.00	-Presses for the manufacture of particle board or fibre building 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 and other machinery for treating wood or cork	0%	0
8479.40.00	-Rope or cable-making machines	0%	0
8479.50	-Industrial robot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8479.50.10	---Of a kind used for treating metal	0%	0
8479.50.20	---Of a kind used for mixing, kneading, crushing, grinding, screening, sifting, homogenising, emulsifying or stirring	5%	0
8479.50.90	---Other	5%	0
8479.60.00	-Evaporative air coolers	5%	0
8479.7	-Passenger boarding bridges:		
8479.71.00	--Of a kind used in airports	5%	0
8479.79.00	--Other	5%	0
8479.8	-Other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8479.81.00	--For treating metal, including electric wire coil-winders	0%	0
8479.82.00	--Mixing, kneading, crushing, grinding, screening, sifting, homogenising, emulsifying or stirring machines	5%	0
8479.89	--Other:		
8479.89.10	---Gas-operated machinery and apparatus for cutting metal, incorporating a computer control	0%	0
8479.89.90	---Other	5%	0
8479.90.00	-Parts	5%	0
8480	MOULDING BOXES FOR METAL FOUNDRY; MOULD BASES; MOULDING PATTERNS; MOULDS FOR METAL (OTHER THAN INGOT MOULDS), METAL CARBIDES, GLASS, MINERAL MATERIALS, RUBBER OR PLASTICS:		
8480.10.00	-Moulding boxes for metal foundry	5%	0
8480.20.00	-Mould bases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480.30.00	-Moulding patterns	5%	0
8480.4	-Moulds for metal or metal carbides:		
8480.41.00	--Injection or compression types	5%	0
8480.49.00	--Other	5%	0
8480.50.00	-Moulds for glass	5%	0
8480.60.00	-Moulds for mineral materials	5%	0
8480.7	-Moulds for rubber or plastics:		
8480.71.00	--Injection or compression types	5%	0
8480.79.00	--Other	5%	0
8481	TAPS, COCKS, VALVES AND SIMILAR APPLIANCES FOR PIPES, BOILER SHELLS, TANKS, VATS OR THE LIKE, INCLUDING PRESSURE-REDUCING VALVES AND THERMOSTATICALLY CONTROLLED VALVES:		
8481.10.00	-Pressure-reducing valves	5%	5
8481.20.00	-Valves for oleohydraulic or pneumatic transmissions	5%	5
8481.30.00	-Check (nonreturn) valves	5%	3
8481.40.00	-Safety or relief valves	5%	5
8481.80	-Other appliances:		
8481.80.10	---Hydraulic control valves specially designed for use in agricultural tractors for the operation of agricultural implements	0%	0
8481.80.90	---Other	5%	0
8481.90	-Parts:		
8481.90.10	---For appliances of 8481.80.10	0%	0
8481.90.90	---Other	5%	0
8482	BALL OR ROLLER BEARINGS:		
8482.10	-Ball bearings:		
8482.10.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8482.10.90	---Other	5%	0
8482.20	-Tapered roller bearings, including cone and tapered roller assemblies:		
8482.20.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8482.20.90	---Other	5%	0
8482.30.00	-Spherical roller bearings	5%	0
8482.40	-Needle roller bearings:		
8482.40.1	---For propeller shaft universal joints of a kind used with vehicles of 8701.20.00, 8702, 8703, 8704 or 8705:		
8482.40.11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8482.40.19	----Other	5%	0
8482.40.90	---Other	5%	0
8482.50.00	-Other cylindrical roller bearings	5%	0
8482.80.00	-Other, including combined ball/roller bearings	5%	0
8482.9	-Parts:		
8482.91	--Balls, needles and rollers:		
8482.91.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8482.91.90	---Other	5%	0
8482.99	--Other:		
8482.99.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8482.99.90	---Other	5%	0
8483	TRANSMISSION SHAFTS (INCLUDING CAM SHAFTS AND CRANK SHAFTS) AND CRANKS; BEARING HOUSINGS AND PLAIN SHAFT BEARINGS; GEARS AND GEARING; BALL OR ROLLER SCREWS; GEAR BOXES AND OTHER SPEED CHANGERS, INCLUDING TORQUE CONVERTERS; FLYWHEELS AND PULLEYS, INCLUDING PULLEY BLOCKS; CLUTCHES AND SHAFT COUPLINGS (INCLUDING UNIVERSAL JOINTS):		
8483.10	-Transmission shafts (including cam shafts and crank shafts) and cranks:		
8483.10.10	---For outboard motors	0%	0
8483.10.9	---Other:		
8483.10.91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3
8483.10.99	----Other	5%	0
8483.20.00	-Bearing housings, incorporating ball or roller bearings	5%	5
8483.30	-Bearing housings, not incorporating ball or roller bearings; plain shaft bearings:		
8483.30.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8483.30.90	---Other	5%	0
8483.40	-Gears and gearing, other than toothed wheels, chain sprockets and other transmission elements presented separately; ball or roller screws; gear boxes and other speed changers, including torque converters: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483.40.1	---Of a kind used for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 of the vehicles of 8701.20.00, 8702, 8703, 8704 or 8705, other than for fuel injection equipment for compression-ignition engines (diesel or semi-diesel engines):		
8483.40.11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3
8483.40.19	----Other	5%	0
8483.40.90	---Other	5%	3
8483.50	-Flywheels and pulleys, including pulley blocks:		
8483.50.1	---Of a kind used for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 of the vehicles of 8701.20.00, 8702, 8703, 8704 or 8705, other than for fuel injection equipment for compression-ignition engines (diesel or semi-diesel engines):		
8483.50.11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8483.50.19	----Other	5%	0
8483.50.90	---Other	5%	5
8483.60	-Clutches and shaft couplings (including universal joints):		
8483.60.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8483.60.90	---Other	5%	0
8483.90.00	-Toothed wheels, chain sprockets and other transmission elements presented separately; parts	5%	5
8484	GASKETS AND SIMILAR JOINTS OF METAL SHEETING COMBINED WITH OTHER MATERIAL OR OF TWO OR MORE LAYERS OF METAL; SETS OR ASSORTMENTS OF GASKETS AND SIMILAR JOINTS, DISSIMILAR IN COMPOSITION, PUT UP IN POUCHES, ENVELOPES OR SIMILAR PACKINGS; MECHANICAL SEALS:		
8484.10	-Gaskets and similar joints of metal sheeting combined with other material or of two or more layers of metal:		
8484.10.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3
8484.10.90	---Other	5%	0
8484.20.00	-Mechanical seals	5%	0
8484.90	-Other:		
8484.90.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8484.90.90	---Other	5%	0
8486	MACHINES AND APPARATUS OF A KIND USED SOLELY OR PRINCIPALLY FOR THE MANUFACTURE OF SEMICONDUCTOR BOULES OR WAFERS, SEMICONDUCTOR DEVICES,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OR FLAT PANEL DISPLAYS; MACHINES AND APPARATUS SPECIFIED IN NOTE 9(C) TO THIS CHAPTER; PARTS AND ACCESSORIES:		
8486.10	-Machines and apparatus for the manufacture of boules or wafers:		
8486.10.10	---Machines and apparatus, as follows: (a) for growing or pulling monocrystal semiconductor boules; (b) machine-tools for working material by removal of material, by the processes specified in 8456 (including laser or other light or photon beam, ionic-beam or electron beam processes); (c) spin dryers for semiconductor wafer processing; (d) sawing machines for sawing monocrystal semiconductor boules into slices; (e) grinding, polishing or lapping machines; (f) industrial or laboratory electric furnaces or ovens	0%	0
8486.10.20	---Machines and apparatus, NSA, which, but for the operation of Note 9(D) to this chapter, would be classified in 8543.70.00	0%	0
8486.10.30	---Machines and apparatus, NSA, for the treatment of materials by a process involving a change of temperature	5%	0
8486.10.90	---Other	5%	0
8486.20	-Machines and apparatus for the manufacture of semiconductor devices or of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486.20.10	---Machines and apparatus, as follows: (a) appliances (including spraying appliances) for wet-etching, developing, stripping or cleaning semiconductor wafers; (b) physical deposition apparatus (including apparatus for deposition by sputtering) on semiconductor wafers; (c) chemical vapour deposition apparatus; (d) machine-tools for working material by removal of material, by the processes specified in 8456 (including laser or other light or photon beam, ionic-beam or electron beam processes); (e) epitaxial deposition machines; (f) industrial or laboratory electric furnaces or ovens; (g) spinners for coating photographic emulsions on semiconductor wafers; (h) for dry-etching patterns on semiconductor materials; (ij) ion implanters for doping semiconductor materials; (k) apparatus for the projection or drawing of circuit patterns on sensitised semiconductor materials; (l) sawing machines for sawing wafers into chips; (m) dicing machines for scribing or scoring semiconductor wafers	0%	0
8486.20.20	---Machines and apparatus, NSA, which, but for the operation of Note 9(D) to this chapter, would be classified in 8543.70.00	0%	0
8486.20.30	---Machines and apparatus, NSA, which, but for the operation of Note 9(D) to this chapter, would be classified in 8477	5%	0
8486.20.90	---Other	5%	0
8486.30	-Machines and apparatus for the manufacture of flat panel displays:		
8486.30.10	---Goods as follows: (a) apparatus for wet-etching, developing, stripping or cleaning of flat panel displays; (b) apparatus and equipment for projection, drawing or plating circuit patterns, used for the manufacture of flat panel displays; (c) machine-tools for working material by removal of material, by the processes specified in 8456 (including laser or other light or photon beam, ionic-beam or electron beam processes); (d) spinners for coating photographic emulsions	0%	0
8486.30.20	---Machines and apparatus, NSA, which, but for the operation of Note 9(D) to this Chapter, would be classified in 8543.70.00	0%	0
8486.30.30	---Mechanical appliances for projecting, dispersing or spraying liquid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flat panel displays, NSA	5%	0
8486.30.90	---Other	5%	0
8486.40	-Machines and apparatus specified in Note 9 (C) to this Chapter:		
8486.40.10	---Machines and apparatus, as follows: (a) machine-tools for working material by removal of material, by the processes specified in 8456 (including laser or other light or photon beam, ionic-beam or electron beam processes); (b) optical and other microscopes; (c) drawing or marking-out instruments; (d) die attach apparatus, tape automated bonders, and wire bonders for the assembly of semiconductors;(e) encapsulation equipment for the assembly of semiconductors; (f) for bending, folding or straightening semiconductor leads; (g) soldering, brazing or welding machines, of a kind described in 8515, for working metal; (h) industrial robots, being automated machines for transport, handling and storage of semiconductor wafers, wafer cassettes or wafer boxes; (ij) injection or compression moulds for rubber or plastics for the manufacture of semiconductor devices	0%	0
8486.40.20	---Machines and apparatus, NSA, which, but for the operation of Note 9(D) to this Chapter, would be classified in 8543.70.00	0%	0
8486.40.30	---Machines and apparatus, NSA, which, but for the operation of Note 9(D) to this Chapter, would be classified in 8477 or 8480.71.00	5%	0
8486.40.40	---Deflash machines for cleaning and removing contaminants from the metal leads of semiconductor packages prior to the electroplating process	0%	0
8486.40.90	---Other, including machinery for lifting, handling, loading or unloading of boules, wafers, semiconductor devices,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and flat panel displays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486.90	-Parts and accessories:		
8486.90.10	---Of goods of 8486.10.10, 8486.20.10, 8486.30.10 and 8486.40.10, other than goods of 8486.90.40	0%	0
8486.90.20	---Of goods of 8486.10.20, 8486.20.20, 8486.30.20 and 8486.40.20	5%	0
8486.90.30	---Of goods of 8486.20.30 and 8486.40.30	5%	0
8486.90.40	---Of soldering, brazing or welding machines of a kind described in 8515	5%	0
8486.90.50	---Of machine-tools of a kind described in 8464, NSA	0%	0
8486.90.60	---Of goods of 8486.30.30 or 8486.40.40	5%	0
8486.90.70	---Which, but for the operation of Note 9(D) to this Chapter, would be classified in 8466.10.00, 8466.20.00 or 8466.30.00	0%	0
8486.90.90	---Other	5%	0
8487	MACHINERY PARTS, NOT CONTAINING ELECTRICAL CONNECTORS, INSULATORS, COILS, CONTACTS OR OTHER ELECTRICAL FEATURE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8487.10.00	-Ships' or boats' propellers and blades therefor	5%	0
8487.90.00	-Other	5%	0
85	ELECTRICAL MACHINERY AND EQUIPMENT AND PARTS THEREOF;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TELEVISION IMAGE AND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AND PARTS AND ACCESSORIES OF SUCH ARTICLES		
8501	ELECTRIC MOTORS AND GENERATORS (EXCLUDING GENERATING SETS):		
8501.10.00	-Motors of an output not exceeding 37.5 W	5%	5
8501.20.00	-Universal AC/DC motors of an output exceeding 37.5 W	5%	0
8501.3	-Other DC motors; DC generators:		
8501.31.00	--Of an output not exceeding 750 W	5%	0
8501.32.00	--Of an output exceeding 750 W but not exceeding 75 kW	5%	0
8501.33.00	--Of an output exceeding 75 kW but not exceeding 375 kW	5%	0
8501.34.00	--Of an output exceeding 375 kW	5%	0
8501.40.00	-Other AC motors, single-phase	5%	0
8501.5	-Other AC motors, multi-phase:		
8501.51.00	--Of an output not exceeding 750 W	5%	0
8501.52.00	--Of an output exceeding 750 W but not exceeding 75 kW	5%	0
8501.53.00	--Of an output exceeding 75 kW	5%	0
8501.6	-AC generators (alternators):		
8501.61.00	--Of an output not exceeding 75 kVA	5%	0
8501.62.00	--Of an output exceeding 75 kVA but not exceeding 375 kVA	5%	0
8501.63.00	--Of an output exceeding 375 kVA but not exceeding 750 kVA	0%	0
8501.64.00	--Of an output exceeding 750 kVA	0%	0
8502	ELECTRIC GENERATING SETS AND ROTARY CONVERTERS:		
8502.1	-Generating sets with compression-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 (diesel or semi-diesel engines):		
8502.11.00	--Of an output not exceeding 75 kVA	5%	0
8502.12.00	--Of an output exceeding 75 kVA but not exceeding 375 kVA	5%	0
8502.13	--Of an output exceeding 375 kVA:		
8502.13.10	---AC generating sets of an output exceeding 500 kVA	0%	0
8502.13.90	---Other	5%	0
8502.20.00	-Generating sets with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	5%	0
8502.3	-Other generating sets:		
8502.31	--Wind-powered:		
8502.31.10	---AC generating sets of an output exceeding 500 kVA	0%	0
8502.31.90	---Other	5%	0
8502.39	--Other:		
8502.39.10	---AC generating sets of an output exceeding 500 kVA	0%	0
8502.39.90	---Other	5%	0
8502.40.00	'-Electric rotary converters	5%	0
8503.00.00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MACHINES OF 8501 OR 8502	5%	5
8504	ELECTRICAL TRANSFORMERS, STATIC CONVERTERS (FOR EXAMPLE, RECTIFIERS) AND INDUCTORS:		
8504.10.00	-Ballasts for discharge lamps or tubes	5%	0
8504.2	-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504.21.00	--Having a power handling capacity not exceeding 650 kVA	5%	0
8504.22.00	--Having a power handling capacity exceeding 650 kVA but not exceeding 10 000 kVA	5%	0
8504.23.00	--Having a power handling capacity exceeding 10 000 kVA	5%	0
8504.3	-Other transformers:		
8504.31.00	--Having a power handling capacity not exceeding 1 kVA	5%	0
8504.32.00	--Having a power handling capacity exceeding 1 kVA but not exceeding 16 kVA	5%	0
8504.33.00	--Having a power handling capacity exceeding 16 kVA but not exceeding 500 kVA	5%	0
8504.34.00	--Having a power handling capacity exceeding 500 kVA	5%	0
8504.40	-Static converters:		
8504.40.30	---Goods, as follows: (a) separately housed units, designed to be housed in the same cabinet as the central processing unit of equipment of 8471; (b) for telecommunication apparatus of 8517	0%	0
8504.40.90	---Other	5%	0
8504.50	-Other inductors:		
8504.50.10	---Goods, as follows: (a) designed for use with equipment of 8471; (b) for telecommunication apparatus of 8517	0%	0
8504.50.90	---Other	5%	0
8504.90	-Parts:		
8504.90.30	---Of goods of 8504.40.30	0%	0
8504.90.90	---Other	5%	0
8505	ELECTRO-MAGNETS; PERMANENT MAGNETS AND ARTICLES INTENDED TO BECOME PERMANENT MAGNETS AFTER MAGNETISATION; ELECTRO-MAGNETIC OR PERMANENT MAGNET CHUCKS, CLAMPS AND SIMILAR HOLDING DEVICES; ELECTRO-MAGNETIC COUPLINGS, CLUTCHES AND BRAKES; ELECTRO-MAGNETIC LIFTING HEADS:		
8505.1	-Permanent magnets and articles intended to become permanent magnets after magnetisation:		
8505.11.00	--Of metal	5%	0
8505.19.00	--Other	5%	0
8505.20.00	-Electro-magnetic couplings, clutches and brakes	0%	0
8505.90.00	-Other, including parts	0%	0
8506	PRIMARY CELLS AND PRIMARY BATTERIES:		
8506.10.00	-Manganese dioxide	0%	0
8506.30.00	-Mercuric oxide	0%	0
8506.40.00	-Silver oxide	0%	0
8506.50.00	-Lithium	0%	0
8506.60.00	-Air-zinc	0%	0
8506.80.00	-Other primary cells and primary batteries	5%	0
8506.90.00	-Parts	0%	0
8507	ELECTRIC ACCUMULATORS, INCLUDING SEPARATORS THEREFOR, WHETHER OR NOT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8507.10	-Lead-acid, of a kind used for starting piston engines:		
8507.10.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8507.10.90	---Other	5%	5
8507.20.00	-Other lead-acid accumulators	5%	5
8507.30.00	-Nickel-cadmium	5%	0
8507.40.00	-Nickel-iron	5%	0
8507.50.00	-Nickel-metal hydride	5%	0
8507.60.00	-Lithium-ion	5%	0
8507.80.00	-Other accumulators	5%	0
8507.90	-Parts:		
8507.90.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8507.90.90	---Other	5%	0
8508	VACUUM CLEANERS:		
8508.1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8508.11.00	--Of a power not exceeding 1 500 W and having a dust bag or other receptacle capacity not exceeding 20 L	5%	0
8508.19.00	--Other	5%	0
8508.60.00	-Other vacuum cleaners	5%	0
8508.70.00	-Parts	5%	0
8509	ELECTRO-MECHANICAL DOMESTIC APPLIANCE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OTHER THAN VACUUM CLEANERS OF 8508:		
8509.40.00	-Food grinders and mixers; fruit or vegetable juice extractors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509.80	-Other appliances:		
8509.80.10	---Floor polishers	5%	0
8509.80.90	---Other	0%	0
8509.90.00	-Parts	5%	0
8510	SHAVERS, HAIR CLIPPERS AND HAIR-REMOVING APPLIANCE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8510.10.00	-Shavers	0%	0
8510.20.00	-Hair clippers	0%	0
8510.30.00	-Hair-removing appliances	0%	0
8510.90.00	-Parts	0%	0
8511	ELECTRICAL IGNITION OR STARTING EQUIPMENT OF A KIND USED FOR SPARK-IGNITION OR COMPRESSION-IGNITION INTERNAL COMBUSTION ENGINES (FOR EXAMPLE, IGNITION MAGNETOS, MAGNETO-DYNAMOS, IGNITION COILS, SPARKING PLUGS AND GLOW PLUGS, STARTER MOTORS); GENERATORS (FOR EXAMPLE, DYNAMOS, ALTERNATORS) AND CUT-OUTS OF A KIND USED IN CONJUNCTION WITH SUCH ENGINES:		
8511.10.00	-Sparking plugs	5%	3
8511.20.00	-Ignition magnetos; magneto-dynamos; magnetic flywheels	5%	0
8511.30.00	-Distributors; ignition coils	5%	3
8511.40	-Starter motors and dual purpose starter-generators:		
8511.40.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3
8511.40.90	---Other	5%	0
8511.50	-Other generators:		
8511.50.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3
8511.50.90	---Other	5%	0
8511.80.00	-Other equipment	5%	3
8511.90.00	-Parts	5%	3
8512	ELECTRICAL LIGHTING OR SIGNALLING EQUIPMENT (EXCLUDING ARTICLES OF 8539), WINDSCREEN WIPERS, DEFROSTERS AND DEMISTERS, OF A KIND USED FOR CYCLES OR MOTOR VEHICLES:		
8512.10.00	-Lighting or visual signalling equipment of a kind used on bicycles	0%	0
8512.20.00	-Other lighting or visual signalling equipment	5%	3
8512.30.00	-Sound signalling equipment	5%	3
8512.40.00	-Windscreen wipers, defrosters and demisters	5%	3
8512.90	-Parts:		
8512.90.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3
8512.90.90	---Other	5%	0
8513	PORTABLE ELECTRIC LAMPS DESIGNED TO FUNCTION BY THEIR OWN SOURCE OF ENERGY (FOR EXAMPLE, DRY BATTERIES, ACCUMULATORS, MAGNETOS), OTHER THAN LIGHTING EQUIPMENT OF 8512:		
8513.10.00	-Lamps	5%	0
8513.90.00	-Parts	0%	0
8514	INDUSTRIAL OR LABORATORY ELECTRIC FURNACES AND OVENS (INCLUDING THOSE FUNCTIONING BY INDUCTION OR DIELECTRIC LOSS); OTHER INDUSTRIAL OR LABORATORY EQUIPMENT FOR THE HEAT TREATMENT OF MATERIALS BY INDUCTION OR DIELECTRIC LOSS:		
8514.10.00	-Resistance heated furnaces and ovens	5%	0
8514.20.00	-Furnaces and ovens functioning by induction or dielectric loss	5%	0
8514.30.00	-Other furnaces and ovens	5%	0
8514.40.00	-Other equipment for the heat treatment of materials by induction or dielectric loss	5%	0
8514.90.00	-Parts	5%	0
8515	ELECTRIC (INCLUDING ELECTRICALLY HEATED GAS), LASER OR OTHER LIGHT OR PHOTON BEAM, ULTRASONIC, ELECTRON BEAM, MAGNETIC PULSE OR PLASMA ARC SOLDERING, BRAZING OR WELDING MACHINES AND APPARATUS, WHETHER OR NOT CAPABLE OF CUTTING; ELECTRIC MACHINES AND APPARATUS FOR HOT SPRAYING OF METALS OR CERMETS :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515.1	-Brazing or soldering machines and apparatus:		
8515.11.00	--Soldering irons and guns	5%	0
8515.19	--Other:		
8515.19.10	---Electric or laser operated brazing or soldering machines and apparatus, of a kind used for working metal, incorporating a computer control	0%	0
8515.19.90	---Other	5%	0
8515.2	-Machines and apparatus for resistance welding of metal:		
8515.21	--Fully or partly automatic:		
8515.21.10	---Electric or laser operated, incorporating a computer control	0%	0
8515.21.90	---Other	5%	0
8515.29.00	--Other	5%	0
8515.3	-Machines and apparatus for arc (including plasma arc) welding of metals:		
8515.31	--Fully or partly automatic:		
8515.31.10	---Electric or laser operated, incorporating a computer control	0%	0
8515.31.90	---Other	5%	0
8515.39.00	--Other	5%	0
8515.80	-Other machines and apparatus:		
8515.80.10	---Electric or laser operated welding machines and apparatus of a kind used for working metal, incorporating a computer control	0%	0
8515.80.90	---Other	5%	0
8515.90.00	-Parts	5%	0
8516	ELECTRIC INSTANTANEOUS OR STORAGE WATER HEATERS AND IMMERSION HEATERS; ELECTRIC SPACE HEATING APPARATUS AND SOIL HEATING APPARATUS; ELECTRO-THERMIC HAIR-DRESSING APPARATUS (FOR EXAMPLE, HAIR DRYERS, HAIR CURLERS, CURLING TONG HEATERS) AND HAND DRYERS; ELECTRIC SMOOTHING IRONS; OTHER ELECTRO-THERMIC APPLIANCES OF A KIND USED FOR DOMESTIC PURPOSES; ELECTRIC HEATING RESISTORS, OTHER THAN THOSE OF 8545:		
8516.10.00	-Electric instantaneous or storage water heaters and immersion heaters	5%	0
8516.2	-Electric space heating apparatus and electric soil heating apparatus:		
8516.21.00	--Storage heating radiators	5%	0
8516.29.00	--Other	5%	3
8516.3	-Electro-thermic hair-dressing or hand-drying apparatus:		
8516.31.00	--Hair dryers	5%	0
8516.32.00	--Other hair-dressing apparatus	0%	0
8516.33.00	--Hand-drying apparatus	5%	0
8516.40.00	-Electric smoothing irons	5%	0
8516.50.00	-Microwave ovens	0%	0
8516.60.00	-Other ovens; cookers, cooking plates, boiling rings, grillers and roasters	5%	0
8516.7	-Other electro-thermic appliances:		
8516.71.00	--Coffee or tea makers	0%	0
8516.72.00	--Toasters	5%	0
8516.79.00	--Other	5%	0
8516.80.00	-Electric heating resistors	5%	0
8516.90.00	-Parts	5%	0
8517	TELEPHONE SETS, INCLUDING TELEPHONES FOR CELLULAR NETWORKS OR FOR OTHER WIRELESS NETWORKS; OTHER APPARATUS FOR THE TRANSMISSION OR RECEPTION OF VOICE, IMAGES OR OTHER DATA, INCLUDING APPARATUS FOR COMMUNICATION IN A WIRED OR WIRELESS NETWORK (SUCH AS A LOCAL OR WIDE AREA NETWORK), OTHER THAN TRANSMISSION OR RECEPTION APPARATUS OF 8443, 8525, 8527 or 8528:		
8517.1	-Telephone sets, including telephones for cellular networks or for other wireless networks:		
8517.11.00	--Line telephone sets with cordless handsets	0%	0
8517.12.00	--Telephones for cellular networks or for other wireless networks	0%	0
8517.18.00	--Other	0%	0
8517.6	-Other apparatus for transmission or reception of voice, images or other data, including apparatus for communication in a wired or wireless network (such as a local or wide area network):		
8517.61.00	--Base stations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517.62.00	--Machines for the reception, conversion and transmission or regeneration of voice, images or other data, including switching and routing apparatus	0%	0
8517.69	--Other:		
8517.69.10	---Reception apparatus for radio-telephony or radio-telegraphy, other than portable receivers for calling, alerting or paging	5%	0
8517.69.90	---Other	0%	0
8517.70	-Parts:		
8517.70.10	---Of goods of 8517.69.10	5%	0
8517.70.90	---Other	0%	0
8518	MICROPHONES AND STANDS THEREFOR; LOUDSPEAKERS, WHETHER OR NOT MOUNTED IN THEIR ENCLOSURES; HEADPHONES AND EARPHONES, WHETHER OR NOT COMBINED WITH A MICROPHONE, AND SETS CONSISTING OF A MICROPHONE AND ONE OR MORE LOUD SPEAKERS; AUDIO-FREQUENCY ELECTRIC AMPLIFIERS; ELECTRIC SOUND AMPLIFIER SETS:		
8518.10	-Microphones and stands therefor:		
8518.10.10	---Goods, as follows: (a) microphones having a frequency range of 300 Hz to 3.4 kHz with a diameter not exceeding 10 mm and a height not exceeding 3 mm, for telecommunication use; (b) cordless microphones incorporating or combined with radio-transmission apparatus	0%	0
8518.10.90	---Other	5%	0
8518.2	-Loudspeakers, whether or not mounted in their enclosures:		
8518.21.00	--Single loudspeakers, mounted in their enclosures	5%	0
8518.22.00	--Multiple loudspeakers, mounted in the same enclosure	5%	0
8518.29	--Other:		
8518.29.10	---Without housing, having a frequency range of 300 Hz to 3.4 kHz with a diameter not exceeding 50 mm, for telecommunication use	0%	0
8518.29.90	---Other	5%	0
8518.30	-Headphones and earphones, whether or not combined with a microphone, and sets consisting of a microphone and one or more loudpseakers:		
8518.30.10	---Goods as follows: (a) line telephone headsets; (b) other headsets, incorporating or combined with radio-transmission apparatus; (c) line telephone handsets incorporating or combined with radio-transmission apparatus	0%	0
8518.30.90	---Other	5%	0
8518.40	-Audio-frequency electric amplifiers:		
8518.40.10	---For use as repeaters in line telephony products	0%	0
8518.40.90	---Other	5%	0
8518.50.00	-Electric sound amplifier sets	5%	0
8518.90.00	-Parts	0%	0
8519	SOUND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8519.20	-Apparatus operated by coins, banknotes, bank cards, tokens or by other means of payment:		
8519.20.10	---Coin or disc operated record-players	0%	0
8519.20.90	---Other	5%	0
8519.30.00	-Turntables (record-decks)	0%	0
8519.50.00	-Telephone answering machines	0%	0
8519.8	-Other apparatus:		
8519.81	--Using magnetic, optical or semiconductor media:		
8519.81.10	---Transcribing machines	0%	0
8519.81.20	---Other sound reproducing appartus, not incorporating a sound recording device	5%	3
8519.81.30	---Dictating machines: (a) not capable of operating without an external source of power; or (b) based on digital audio or cassette-type magnetic tape recorders	0%	0
8519.81.4	---Other magnetic tape recorders incorporating sound reproducing apparatus:		
8519.81.41	----Cassette-type	5%	0
8519.81.49	----Other	0%	0
8519.81.90	---Other sound recording apparatus,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a sound reproducing device	5%	0
8519.89	--Other:		
8519.89.10	---Transcribing machines	0%	0
8519.89.20	---Record-players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519.89.30	---Other sound reproducing apparatus, not incorporating a sound recording device	5%	3
8519.89.90	---Other	5%	0
8521	VIDEO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A VIDEO TUNER:		
8521.10.00	-Magnetic tape-type	0%	0
8521.90.00	-Other	0%	0
8522	PARTS AND ACCESSORIE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APPARATUS OF 8519 OR 8521:		
8522.10.00	-Pick-up cartridges	0%	0
8522.90.00	-Other	0%	0
8523	DISCS, TAPES, SOLID-STATE NON-VOLATILE STORAGE DEVICES, "SMART CARDS" AND OTHER MEDIA FOR THE RECORDING OF SOUND OR OF OTHER PHENOMENA, WHETHER OR NOT RECORDED INCLUDING MATRICES AND MASTERS FOR THE PRODUCTION OF DISCS, BUT EXCLUDING PRODUCTS OF CHAPTER 37:		
8523.2	-Magnetic media:		
8523.21.00	--Cards incorporating a magnetic stripe	5%	0
8523.29.00	--Other	0%	0
8523.4	-Optical media:		
8523.41.00	--Unrecorded	0%	0
8523.49.00	--Other	0%	0
8523.5	-Semiconductor media:		
8523.51.00	--Solid-state non-volatile storage devices	0%	0
8523.52.00	--"Smart cards"	0%	0
8523.59.00	--Other	0%	0
8523.80.00	-Other	0%	0
8525	TRANSMISSION APPARATUS FOR RADIO-BROADCASTING OR TELEVISION,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RECEPTION APPARATUS OR SOUND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TELEVISION CAMERAS, DIGITAL CAMERAS AND VIDEO CAMERA RECORDERS:		
8525.50.00	-Transmission apparatus	5%	0
8525.60.00	-Transmission apparatus incorporating reception apparatus	0%	0
8525.80	-Television cameras, digital cameras and video camera recorders:		
8525.80.10	---Goods, as follows: (a) digital cameras; (b) web cameras	0%	0
8525.80.90	---Other	5%	0
8526	RADAR APPARATUS, RADIO NAVIGATIONAL AID APPARATUS AND RADIO REMOTE CONTROL APPARATUS:		
8526.10.00	-Radar apparatus	5%	0
8526.9	-Other:		
8526.91.00	--Radio navigational aid apparatus	5%	0
8526.92.00	--Radio remote control apparatus	5%	0
8527	RECEPTION APPARATUS FOR RADIO-BROADCASTING, WHETHER OR NOT COMBINED, IN THE SAME HOUSING, WITH SOUND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OR A CLOCK:		
8527.1	-Radio-broadcast receivers capable of operating without an external source of power:		
8527.12.00	--Pocket-size radio cassette-players	0%	0
8527.13.00	--Other apparatus combined with sound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0%	0
8527.19.00	--Other	5%	0
8527.2	-Radio-broadcast receivers not capable of operating without an external source of power, of a kind used in motor vehicles:		
8527.21.00	--Combined with sound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5%	0
8527.29.00	--Other	5%	3
8527.9	-Other:		
8527.91.00	--Combined with sound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5%	0
8527.92.00	--Not combined with sound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but combined with a clock	0%	0
8527.99.00	--Other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528	MONITORS AND PROJECTORS, NOT INCORPORATING TELEVISION RECEPTION APPARATUS; RECEPTION APPARATUS FOR TELEVISION,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RADIO-BROADCAST RECEIVERS OR SOUND OR VIDEO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8528.4	-Cathode-ray tube monitors:		
8528.41.00	--Of a kind solely or principally used in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system of 8471	0%	0
8528.49.00	--Other	0%	0
8528.5	-Other monitors:		
8528.51.00	--Of a kind solely or principally used in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system of 8471	0%	0
8528.59.00	--Other	0%	0
8528.6	-Projectors:		
8528.61.00	--Of a kind solely or principally used in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system of 8471	0%	0
8528.69.00	--Other	0%	0
8528.7	-Reception apparatus for television,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radio-broadcast receivers or sound or video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8528.71	--Not designed to incorporate a video display or screen:		
8528.71.10	---Colour	5%	0
8528.71.20	---Black and white or other monochrome	0%	0
8528.72.00	--Other, colour	5%	0
8528.73.00	--Other, monochrome	0%	0
8529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APPARATUS OF 8525 TO 8528:		
8529.10	-Aerials and aerial reflectors of all kinds; parts suitable for use therewith:		
8529.10.20	---For goods of 8525.60.00 or 8525.80.10	0%	0
8529.10.30	---For goods of 8525 NSA, or 8526	5%	0
8529.10.90	---Other	5%	0
8529.90	-Other:		
8529.90.20	---For goods of 8525.60.00 or 8525.80.10	0%	0
8529.90.30	---For goods of 8525 NSA, or 8526	5%	0
8529.90.40	---For goods of 8528.41.00, 8528.51.00 or 8528.61.00	0%	0
8529.90.90	---Other	5%	0
8530	ELECTRICAL SIGNALLING, SAFETY OR TRAFFIC CONTROL EQUIPMENT FOR RAILWAYS, TRAMWAYS, ROADS, INLAND WATERWAYS, PARKING FACILITIES, PORT INSTALLATIONS OR AIRFIELDS (OTHER THAN THOSE OF 8608.00.00):		
8530.10.00	-Equipment for railways or tramways	5%	0
8530.80.00	-Other equipment	0%	0
8530.90.00	-Parts	5%	0
8531	ELECTRIC SOUND OR VISUAL SIGNALLING APPARATUS (FOR EXAMPLE, BELLS, SIRENS, INDICATOR PANELS, BURGLAR OR FIRE ALARMS), OTHER THAN THOSE OF 8512 OR 8530:		
8531.10	-Burglar or fire alarms and similar apparatus:		
8531.10.10	---Burglar alarms	0%	0
8531.10.9	---Other:		
8531.10.91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8531.10.99	----Other	5%	0
8531.20.00	-Indicator panels incorporating liquid crystal devices (LCD) or light emitting diodes (LED)	0%	0
8531.80.00	-Other apparatus	0%	0
8531.90	-Parts:		
8531.90.10	---For goods of 8531.20.00 or 8531.80.00	0%	0
8531.90.90	---Other	5%	0
8532	ELECTRICAL CAPACITORS, FIXED, VARIABLE OR ADJUSTABLE (PRE-SET):		
8532.10.00	-Fixed capacitors designed for use in 50/60 Hz circuits and having a reactive power handling capacity of not less than 0.5 kvar (power capacitors)	0%	0
8532.2	-Other fixed capacitors:		
8532.21.00	--Tantalum	0%	0
8532.22.00	--Aluminium electrolytic	0%	0
8532.23.00	--Ceramic dielectric, single layer	0%	0
8532.24.00	--Ceramic dielectric, multilayer	0%	0
8532.25.00	--Dielectric of paper or plastics	0%	0
8532.29.00	--Other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532.30.00	-Variable or adjustable (pre-set) capacitors	0%	0
8532.90.00	-Parts	0%	0
8533	ELECTRICAL RESISTORS (INCLUDING RHEOSTATS AND POTENTIOMETERS), OTHER THAN HEATING RESISTORS:		
8533.10.00	-Fixed carbon resistors, composition or film types	0%	0
8533.2	-Other fixed resistors:		
8533.21.00	--For a power handling capacity not exceeding 20 W	0%	0
8533.29.00	--Other	0%	0
8533.3	-Wirewound variable resistors, including rheostats and potentiometers:		
8533.31.00	--For a power handling capacity not exceeding 20 W	0%	0
8533.39.00	--Other	0%	0
8533.40.00	-Other variable resistors, including rheostats and potentiometers	0%	0
8533.90.00	-Parts	0%	0
8534.00.00	PRINTED CIRCUITS	0%	0
8535	ELECTRICAL APPARATUS FOR SWITCHING OR PROTECTING ELECTRICAL CIRCUITS, OR FOR MAKING CONNECTIONS TO OR IN ELECTRICAL CIRCUITS (FOR EXAMPLE, SWITCHES, FUSES, LIGHTNING ARRESTERS, VOLTAGE LIMITERS, SURGE SUPPRESSORS, PLUGS AND OTHER CONNECTORS, JUNCTION BOXES), FOR A VOLTAGE EXCEEDING 1 000 VOLTS:		
8535.10.00	-Fuses	5%	0
8535.2	-Automatic circuit breakers:		
8535.21.00	--For a voltage of less than 72.5 kV	5%	0
8535.29.00	--Other	5%	0
8535.30.00	-Isolating switches and make-and-break switches	5%	0
8535.40	-Lightning arresters, voltage limiters and surge suppressors:		
8535.40.10	---Lightning arresters (surge diverters), suitable for the protection of electricity supply equipment	5%	0
8535.40.90	---Other	5%	0
8535.90.00	-Other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536	ELECTRICAL APPARATUS FOR SWITCHING OR PROTECTING ELECTRICAL CIRCUITS, OR FOR MAKING CONNECTIONS TO OR IN ELECTRICAL CIRCUITS (FOR EXAMPLE, SWITCHES, RELAYS, FUSES, SURGE SUPPRESSORS, PLUGS, SOCKETS, LAMP-HOLDERS AND OTHER CONNECTORS, JUNCTION BOXES), FOR A VOLTAGE NOT EXCEEDING 1 000 VOLTS; CONNECTORS FOR OPTICAL FIBRES, OPTICAL FIBRE BUNDLES OR CABLES:		
8536.10.00	-Fuses	5%	0
8536.20.00	-Automatic circuit breakers	5%	0
8536.30.00	-Other apparatus for protecting electrical circuits	5%	0
8536.4	-Relays:		
8536.41.00	--For a voltage not exceeding 60 V	5%	0
8536.49.00	--Other	5%	0
8536.50	-Other switches:		
8536.50.10	---Time switches, not being relays	5%	0
8536.50.9	---Other:		
8536.50.92	----Goods, as follows: (a) electronic AC switches consisting of optically coupled input and output circuits (insulated thyristor AC switches); (b) electronic switches, including temperature protected electronic switches, consisting of a transistor and a logic chip (chip-on-chip technology) for a voltage not exceeding 1 000 volts; (c) electromechanical snap-action switches for a current not exceeding 11 amperes	0%	0
8536.50.93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NSA	5%	5
8536.50.99	----Other	5%	0
8536.6	-Lamp-holders, plugs and sockets:		
8536.61.00	--Lamp-holders	5%	0
8536.69	--Other:		
8536.69.10	---Plugs and sockets for co-axial cables or printed circuits	0%	0
8536.69.90	---Other	5%	0
8536.70	-Connectors for optical fibres, optical fibre bundles or cables:		
8536.70.1	---Of plastics: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536.70.11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8536.70.19	----Other	5%	0
8536.70.2	---Of iron or steel:		
8536.70.21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8536.70.29	----Other	5%	0
8536.70.30	---Of glass	0%	0
8536.70.40	---Of ceramics	5%	0
8536.70.90	---Of other materials	5%	0
8536.90	-Other apparatus:		
8536.90.10	---Goods, as follows: (a) connection and contact elements for wires and cables; (b) wafer probers	0%	0
8536.90.90	---Other	5%	0
8537	BOARDS, PANELS, CONSOLES, DESKS, CABINETS AND OTHER BASES, EQUIPPED WITH TWO OR MORE APPARATUS OF 8535 OR 8536, FOR ELECTRIC CONTROL OR THE DISTRIBUTION OF ELECTRICITY, INCLUDING THOSE INCORPORATING INSTRUMENTS OR APPARATUS OF CHAPTER 90, AND NUMERICAL CONTROL APPARATUS, OTHER THAN SWITCHING APPARATUS OF 8517:		
8537.10	-For a voltage not exceeding 1 000 V:		
8537.10.10	---Programmable controllers	0%	0
8537.10.90	---Other	5%	0
8537.20	-For a voltage exceeding 1 000 V:		
8537.20.10	---Programmable controllers	0%	0
8537.20.90	---Other	5%	0
8538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APPARATUS OF 8535, 8536 OR 8537:		
8538.10	-Boards, panels, consoles, desks, cabinets and other bases for the goods of 8537, not equipped with their apparatus:		
8538.10.10	---For programmable controllers	0%	0
8538.10.90	---Other	5%	0
8538.90	-Other:		
8538.90.1	---Of goods of 8536.70:		
8538.90.11	----Of goods of 8536.70.11	5%	5
8538.90.12	----Of goods of 8536.70.19	5%	0
8538.90.13	----Of goods of 8536.70.21	5%	5
8538.90.14	----Of goods of 8536.70.29	5%	0
8538.90.15	----Of goods of 8536.70.30	0%	0
8538.90.16	----Of goods of 8536.70.40	5%	0
8538.90.19	----Other	5%	0
8538.90.90	---Other	0%	0
8539	ELECTRIC FILAMENT OR DISCHARGE LAMPS, INCLUDING SEALED BEAM LAMP UNITS AND ULTRA-VIOLET OR INFRA-RED LAMPS; ARC-LAMPS:		
8539.10	-Sealed beam lamp units:		
8539.10.10	---For motorcycles	0%	0
8539.10.90	---Other	5%	5
8539.2	-Other filament lamps, excluding ultra-violet or infra-red lamps:		
8539.21.00	--Tungsten halogen	0%	0
8539.22.00	--Other, of a power not exceeding 200 W and for a voltage exceeding 100 V	5%	0
8539.29.00	--Other	5%	0
8539.3	-Discharge lamps, other than ultra-violet lamps:		
8539.31.00	--Fluorescent, hot cathode	5%	0
8539.32.00	--Mercury or sodium vapour lamps; metal halide lamps	5%	0
8539.39.00	--Other	5%	0
8539.4	-Ultra-violet or infra-red lamps; arc-lamps:		
8539.41.00	--Arc-lamps	5%	0
8539.49.00	--Other	5%	0
8539.90.00	-Parts	5%	0
8540	THERMIONIC, COLD CATHODE OR PHOTO-CATHODE VALVES AND TUBES (FOR EXAMPLE, VACUUM OR VAPOUR OR GAS FILLED VALVES AND TUBES, MERCURY ARC RECTIFYING VALVES AND TUBES, CATHODE-RAY TUBES, TELEVISION CAMERA TUBES):		
8540.1	-Cathode-ray television picture tubes, including video monitor cathode-ray tubes:		
8540.11.00	--Colour	0%	0
8540.12.00	--Monochrome	0%	0
8540.20.00	-Television camera tubes; image converters and intensifiers; other photo-cathode tubes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540.40.00	-Data/graphic display tubes, monochrome; data/graphic display tubes, colour, with a phosphor dot screen pitch smaller than 0.4 mm	0%	0
8540.60.00	-Other cathode-ray tubes	0%	0
8540.7	-Microwave tubes (for example, magnetrons, klystrons, travelling wave tubes, carcinotrons), excluding grid-controlled tubes:		
8540.71.00	--Magnetrons	0%	0
8540.79.00	--Other	5%	0
8540.8	-Other valves and tubes:		
8540.81.00	--Receiver or amplifier valves and tubes	0%	0
8540.89.00	--Other	5%	0
8540.9	-Parts:		
8540.91.00	--Of cathode-ray tubes	0%	0
8540.99.00	--Other	0%	0
8541	DIODES, TRANSISTORS AND SIMILAR SEMICONDUCTOR DEVICES; 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S, INCLUDING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 MODULES OR MADE UP INTO PANELS; LIGHT EMITTING DIODES; MOUNTED PIEZO-ELECTRIC CRYSTALS:		
8541.10.00	-Diodes, other than photosensitive or light emitting diodes	0%	0
8541.2	-Transistors, other than photosensitive transistors:		
8541.21.00	--With a dissipation rate of less than 1 W	0%	0
8541.29.00	--Other	0%	0
8541.30.00	-Thyristors, diacs and triacs, other than photosensitive devices	0%	0
8541.40.00	-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s, including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 modules or made up into panels; light emitting diodes	0%	0
8541.50.00	-Other semiconductor devices	0%	0
8541.60.00	-Mounted piezo-electric crystals	0%	0
8541.90.00	-Parts	0%	0
8542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8542.3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8542.31.00	--Processors and controllers, whether or not combined with memories, converters, logic circuits, amplifiers, clock and timing circuits, or other	0%	0
	circuits		
8542.32.00	--Memories	0%	0
8542.33.00	--Amplifiers	0%	0
8542.39.00	--Other	0%	0
8542.90.00	-Parts	0%	0
8543	ELECTRICAL MACHINES AND APPARATU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8543.10.00	-Particle accelerators	0%	0
8543.20.00	-Signal generators	5%	0
8543.30.00	-Machines and apparatus for electroplating, electrolysis and electrophoresis	5%	0
8543.70.00	-Other machines and apparatus	0%	0
8543.90	-Parts:		
8543.90.10	---Of flat panel display devices	0%	0
8543.90.20	---Electronic microassemblies	0%	0
8543.90.90	---Other	5%	0
8544	INSULATED (INCLUDING ENAMELLED OR ANODISED) WIRE, CABLE (INCLUDING CO-AXIAL CABLE) AND OTHER INSULATED ELECTRIC CONDUCTORS, WHETHER OR NOT FITTED WITH CONNECTORS; OPTICAL FIBRE CABLES, MADE UP OF INDIVIDUALLY SHEATHED FIBRES, WHETHER OR NOT ASSEMBLED WITH ELECTRIC CONDUCTORS OR FITTED WITH CONNECTORS:		
8544.1	-Winding wire:		
8544.11.00	--Of copper	5%	0
8544.19.00	--Other	5%	0
8544.20.00	-Co-axial cable and other co-axial electric conductors	5%	0
8544.30.00	-Ignition wiring sets and other wiring sets of a kind used in vehicles, aircraft or ships	5%	5
8544.4	-Other electric conductors, for a voltage not exceeding 1 000 V:		
8544.42	--Fitted with connectors:		
8544.42.1	---For a voltage not exceeding 80 V:		
8544.42.11	----Goods, as follows: (a) compensation or extension leads for thermo-couples; (b) of a kind used for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telecommunications		
8544.42.19	----Other	5%	0
8544.42.2	---For a voltage exceeding 80 V but not exceeding 1 000 V:		
8544.42.21	----Of a kind used for telecommunications	0%	0
8544.42.29	----Other	5%	0
8544.49	--Other:		
8544.49.1	---For a voltage not exceeding 80 V:		
8544.49.11	----Goods, as follows: (a) compensation or extension leads for thermo-couples; (b) of a kind used for telecommunications	0%	0
8544.49.19	----Other	5%	0
8544.49.20	---For a voltage exceeding 80 V but not exceeding 1 000 V	5%	0
8544.60	-Other electric conductors, for a voltage exceeding 1 000 V:		
8544.60.10	---Designed for working pressures exceeding 33 kV	0%	0
8544.60.90	---Other	5%	0
8544.70.00	-Optical fibre cables	0%	0
8545	CARBON ELECTRODES, CARBON BRUSHES, LAMP CARBONS, BATTERY CARBONS AND OTHER ARTICLES OF GRAPHITE OR OTHER CARBON, WITH OR WITHOUT METAL, OF A KIND USED FOR ELECTRICAL PURPOSES:		
8545.1	-Electrodes:		
8545.11.00	--Of a kind used for furnaces	0%	0
8545.19.00	--Other	0%	0
8545.20.00	-Brushes	5%	0
8545.90.00	-Other	0%	0
8546	ELECTRICAL INSULATORS OF ANY MATERIAL:		
8546.10.00	-Of glass	5%	0
8546.20.00	-Of ceramics	5%	0
8546.90.00	-Other	5%	0
8547	INSULATING FITTINGS FOR ELECTRICAL MACHINES, APPLIANCES OR EQUIPMENT, BEING FITTINGS WHOLLY OF INSULATING MATERIAL APART FROM ANY MINOR COMPONENTS OF METAL (FOR EXAMPLE, THREADED SOCKETS) INCORPORATED DURING MOULDING SOLELY FOR PURPOSES OF ASSEMBLY, OTHER THAN INSULATORS OF 8546; ELECTRICAL CONDUIT TUBING AND JOINTS THEREFOR, OF A BASE METAL LINED WITH INSULATING MATERIAL:		
8547.10.00	-Insulating fittings of ceramics	5%	0
8547.20.00	-Insulating fittings of plastics	0%	0
8547.90.00	-Other	5%	0
8548	WASTE AND SCRAP OF PRIMARY CELLS, PRIMARY BATTERIES AND ELECTRIC ACCUMULATORS; SPENT PRIMARY CELLS, SPENT PRIMARY BATTERIES AND SPENT ELECTRIC ACCUMULATORS; ELECTRICAL PARTS OF MACHINERY OR APPARATU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8548.10	-Waste and scrap of primary cells, primary batteries and electric accumulators; spent primary cells, spent primary batteries and spent electric accumulators:		
8548.10.30	---Spent electric accumulators	5%	0
8548.10.90	---Other	0%	0
8548.90	-Other:		
8548.90.10	---Electronic microassemblies	0%	0
8548.90.90	---Other	0%	0
86	RAILWAY OR TRAMWAY LOCOMOTIVES, ROLLING-STOCK AND PARTS THEREOF; RAILWAY OR TRAMWAY TRACK FIXTURES AND FITTINGS AND PARTS THEREOF; MECHANICAL (INCLUDING ELECTRO-MECHANICAL) TRAFFIC SIGNALLING EQUIPMENT OF ALL KINDS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601	RAIL LOCOMOTIVES POWERED FROM AN EXTERNAL SOURCE OF ELECTRICITY OR BY ELECTRIC ACCUMULATORS:		
8601.10.00	-Powered from an external source of electricity	5%	0
8601.20.00	-Powered by electric accumulators	5%	0
8602	OTHER RAIL LOCOMOTIVES; LOCOMOTIVE TENDERS:		
8602.10.00	-Diesel-electric locomotives	5%	0
8602.90.00	-Other	5%	0
8603	SELF-PROPELLED RAILWAY OR TRAMWAY COACHES, VANS AND TRUCKS, OTHER THAN THOSE OF 8604.00.00:		
8603.10.00	-Powered from an external source of electricity	5%	0
8603.90.00	-Other	5%	0
8604.00.00	RAILWAY OR TRAMWAY MAINTENANCE OR SERVICE VEHICLES, WHETHER OR NOT SELF-PROPELLED (FOR EXAMPLE, WORKSHOPS, CRANES, BALLAST TAMPERS, TRACKLINERS, TESTING COACHES AND TRACK INSPECTION VEHICLES)	5%	0
8605.00.00	RAILWAY OR TRAMWAY PASSENGER COACHES, NOT SELF-PROPELLED; LUGGAGE VANS, POST OFFICE COACHES AND OTHER SPECIAL PURPOSE RAILWAY OR TRAMWAY COACHES, NOT SELF-PROPELLED (EXCLUDING THOSE OF 8604.00.00)	5%	0
8606	RAILWAY OR TRAMWAY GOODS VANS AND WAGONS, NOT SELF-PROPELLED:		
8606.10.00	-Tank wagons and the like	5%	0
8606.30.00	-Self-discharging vans and wagons, other than those of 8606.10.00	5%	0
8606.9	-Other:		
8606.91.00	--Covered and closed	5%	0
8606.92.00	--Open, with non-removable sides of a height exceeding 60 cm	5%	0
8606.99.00	--Other	5%	0
8607	PARTS OF RAILWAY OR TRAMWAY LOCOMOTIVES OR ROLLING-STOCK:		
8607.1	-Bogies, bissel-bogies, axles and wheels, and parts thereof:		
8607.11.00	--Driving bogies and bissel-bogies	5%	0
8607.12.00	--Other bogies and bissel-bogies	5%	0
8607.19.00	--Other, including parts	5%	0
8607.2	-Brakes and parts thereof:		
8607.21.00	--Air brakes and parts thereof	5%	0
8607.29.00	--Other	5%	0
8607.30.00	-Hooks and other coupling devices, buffers, and parts thereof	5%	0
8607.9	-Other:		
8607.91.00	--Of locomotives	5%	0
8607.99.00	--Other	5%	0
8608.00.00	RAILWAY OR TRAMWAY TRACK FIXTURES AND FITTINGS; MECHANICAL (INCLUDING ELECTRO-MECHANICAL) SIGNALLING, SAFETY OR TRAFFIC CONTROL EQUIPMENT FOR RAILWAYS, TRAMWAYS, ROADS, INLAND WATERWAYS, PARKING FACILITIES, PORT INSTALLATIONS OR AIRFIELDS; PARTS OF THE FOREGOING:	5%	0
8609.00.00	CONTAINERS (INCLUDING CONTAINERS FOR THE TRANSPORT OF FLUIDS) SPECIALLY DESIGNED AND EQUIPPED FOR CARRIAGE BY ONE OR MORE MODES OF TRANSPORT	0%	0
87	VEHICLES OTHER THAN RAILWAY OR TRAMWAY ROLLING-STOCK, AN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8701	TRACTORS (OTHER THAN TRACTORS OF 8709):		
8701.10.00	-Pedestrian controlled tractors	0%	0
8701.20.00	-Road tractors for semi-trailers	5%	0
8701.30.00	-Track-laying tractors	0%	0
8701.90	-Other:		
8701.90.1	---Agricultural tractors:		
8701.90.11	----Goods, as follows: (a) having an engine power of 15 kW or greater; (b) having an engine power less than 15 kW with a single power take-off, rear axle mounted and rear facing and having rear hydraulic lift 3 point linkage	0%	0
8701.90.19	----Other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701.90.20	---Tractors for dumpers	5%	0
8701.90.90	---Other	5%	0
8702	MOTOR VEHICLES FOR THE TRANSPORT OF TEN OR MORE PERSONS, INCLUDING THE DRIVER:		
8702.10	-With compression-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 (diesel or semi-diesel):		
8702.10.10	---Goods, as follows: (a) g.v.w. exceeding 3.5 t; (b) g.v.w. not exceeding 3.5 t, assembled	5%	3
8702.10.90	---Other	5%	3
8702.90	-Other:		
8702.90.10	---Goods, as follows: (a) g.v.w. exceeding 3.5 t; (b) g.v.w. not exceeding 3.5 t, assembled	5%	3
8702.90.90	---Other	5%	3
8703	MOTOR CARS AND OTHER MOTOR VEHICLES PRINCIP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OTHER THAN THOSE OF 8702), INCLUDING STATION WAGONS AND RACING CARS:		
8703.10.00	-Vehicles specially designed for travelling on snow; golf cars and similar vehicles	5%	0
8703.2	-Other vehicles, with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reciprocating piston engine:		
8703.21	--Of a cylinder capacity not exceeding 1 000 cm3:		
8703.21.1	---Passenger motor vehicles:		
8703.21.11	----Used or secondhand vehicles	5%, and $12,000 each	3A
8703.21.19	----Other	5%	0
8703.21.20	---Goods, NSA, as follows: (a) g.v.w. exceeding 3.5 t; (b) g.v.w. not exceeding 3.5 t, assembled	5%	0
8703.21.90	---Other	5%	0
8703.22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1 000 cm3 but not exceeding 1 500 cm3:		
8703.22.1	---Passenger motor vehicles:		
8703.22.11	----Used or secondhand vehicles	5%, and $12,000 each	3A
8703.22.19	----Other	5%	0
8703.22.20	---Goods, NSA, as follows: (a) g.v.w. exceeding 3.5 t; (b) g.v.w. not exceeding 3.5 t, assembled	5%	0
8703.22.90	---Other	5%	0
8703.23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1 500 cm3 but not exceeding 3 000 cm3:		
8703.23.1	---Passenger motor vehicles:		
8703.23.11	----Used or secondhand vehicles	5%, and $12,000 each	3A
8703.23.19	----Other	5%	0
8703.23.20	---Goods, NSA, as follows: (a) g.v.w. exceeding 3.5 t; (b) g.v.w. not exceeding 3.5 t, assembled	5%	3
8703.23.90	---Other	5%	0
8703.24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3 000 cm3:		
8703.24.1	---Passenger motor vehicles:		
8703.24.11	----Used or secondhand vehicles	5%, and $12,000 each	3A
8703.24.19	----Other	5%	3
8703.24.20	---Goods, NSA, as follows: (a) g.v.w. exceeding 3.5 t; (b) g.v.w. not exceeding 3.5 t, assembled	5%	3
8703.24.90	---Other	5%	0
8703.3	-Other vehicles, with compression-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 (diesel or semi-diesel):		
8703.31	--Of a cylinder capacity not exceeding 1 500 cm3:		
8703.31.1	---Passenger motor vehicles:		
8703.31.11	----Used or secondhand vehicles	5%, and $12,000 each	3A
8703.31.19	----Other	5%	0
8703.31.20	---Goods, NSA, as follows: (a) g.v.w. exceeding 3.5 t; (b) g.v.w. not exceeding 3.5 t, assembled	5%	0
8703.31.90	---Other	5%	0
8703.32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1 500 cm3 but not exceeding 2 500 cm3:		
8703.32.1	---Passenger motor vehicles:		
8703.32.11	----Used or secondhand vehicles	5%, and $12,000 each	3A
8703.32.19	----Other	5%	3
8703.32.20	---Goods, NSA, as follows: (a) g.v.w. exceeding 3.5 t; (b) g.v.w. not exceeding 3.5 t, assembled	5%	0
8703.32.90	---Other	5%	0
8703.33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2 500 cm3:		
8703.33.1	---Passenger motor vehicles:		
8703.33.11	----Used or secondhand vehicles	5%, and $12,000 each	3A
8703.33.19	----Other	5%	3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703.33.20	---Goods, NSA, as follows: (a) g.v.w. exceeding 3.5 t; (b) g.v.w. not exceeding 3.5 t, assembled	5%	3
8703.33.90	---Other	5%	0
8703.90	-Other:		
8703.90.1	---Passenger motor vehicles:		
8703.90.11	----Used or secondhand vehicles	5%, and $12,000 each	3A
8703.90.19	----Other	5%	0
8703.90.20	---Goods, NSA, as follows: (a) g.v.w. exceeding 3.5 t; (b) g.v.w. not exceeding 3.5 t, assembled	5%	0
8703.90.90	---Other	5%	0
8704	MOTOR VEHICLES FOR THE TRANSPORT OF GOODS:		
8704.10.00	-Dumpers designed for off-highway use	5%	0
8704.2	-Other, with compression-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 (diesel or semi-diesel):		
8704.21	--g.v.w. not exceeding 5 t:		
8704.21.10	---Goods, as follows: (a) g.v.w. exceeding 3.5 t; (b) g.v.w. not exceeding 3.5 t, assembled	5%	0
8704.21.90	---Other	5%	0
8704.22.00	--g.v.w. exceeding 5 t but not exceeding 20 t	5%	0
8704.23.00	--g.v.w. exceeding 20 t	5%	0
8704.3	-Other, with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		
8704.31	--g.v.w. not exceeding 5 t:		
8704.31.10	---Goods, as follows: (a) g.v.w. exceeding 3.5 t; (b) g.v.w. not exceeding 3.5 t, assembled	5%	3
8704.31.90	---Other	5%	0
8704.32.00	--g.v.w. exceeding 5 t	5%	0
8704.90	-Other:		
8704.90.10	---Assembled	5%	0
8704.90.90	---Other	5%	0
8705	SPECIAL PURPOSE MOTOR VEHICLES, OTHER THAN THOSE PRINCIP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OR GOODS (FOR EXAMPLE, BREAKDOWN LORRIES, CRANE LORRIES, FIRE FIGHTING VEHICLES, CONCRETE-MIXER LORRIES, ROAD SWEEPER LORRIES, SPRAYING LORRIES, MOBILE WORKSHOPS, MOBILE RADIOLOGICAL UNITS):		
8705.10.00	-Crane lorries	5%	0
8705.20.00	-Mobile drilling derricks	5%	0
8705.30.00	-Fire fighting vehicles	5%	0
8705.40.00	-Concrete-mixer lorries	5%	0
8705.90.00	-Other	5%	0
8706	CHASSIS FITTED WITH ENGINES, FOR THE MOTOR VEHICLES OF 8701 TO 8705:		
8706.00.10	---For use in the assembly or manufacture of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8706.00.9	---Other:		
8706.00.91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8706.00.99	----Other	5%	5
8707	BODIES (INCLUDING CABS), FOR THE MOTOR VEHICLES OF 8701 TO 8705:		
8707.10	-For the vehicles of 8703:		
8707.10.10	---For use in the assembly or manufacture of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8707.10.9	---Other:		
8707.10.91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8707.10.99	----Other	5%	5
8707.90	-Other:		
8707.90.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8707.90.90	---Other	5%	5
8708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OF 8701 TO 8705:		
8708.10	-Bumpers and parts thereof:		
8708.10.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3
8708.10.90	---Other	5%	3
8708.2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bodies (including cabs):		
8708.21	--Safety seat belts: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708.21.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3
8708.21.90	---Other	5%	3
8708.29	--Other:		
8708.29.30	---For the tractors of 8701.10.00, 8701.30.00, 8701.90.1 or 8701.90.90	0%	0
8708.29.9	---Other:		
8708.29.91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3
8708.29.99	----Other	5%	3
8708.30	-Brakes and servo-brakes; parts thereof:		
8708.30.1	---Mounted brake linings:		
8708.30.11	----For the tractors of 8701.10.00, 8701.30.00, 8701.90.1 or 8701.90.90	0%	0
8708.30.12	----Other,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3
8708.30.19	----Other	5%	3
8708.30.9	---Other:		
8708.30.91	----For tractors of 8701.90.90	5%	0
8708.30.92	----For the tractors of 8701.10.00, 8701.30.00 or 8701.90.1	0%	0
8708.30.93	----Other,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3
8708.30.99	----Other	5%	3
8708.40	-Gear boxes and parts thereof:		
8708.40.4	---Gear boxes:		
8708.40.41	----For the tractors of 8701.10.00, 8701.30.00, 8701.90.1 or 8701.90.90	0%	0
8708.40.42	----Other, for use in the assembly or manufacture of passenger motor vehicles	5%	3
8708.40.43	----Other,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3
8708.40.49	----Other	5%	3
8708.40.5	---Parts of goods of 8708.40.4:		
8708.40.51	----For the tractors of 8701.10.00, 8701.30.00, 8701.90.1 or 8701.90.90	0%	0
8708.40.52	----Other,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3
8708.40.59	----Other	5%	3
8708.50	-Drive-axles with differential, whether or not provided with other transmission components, and non-driving axles; parts thereof:		
8708.50.4	---Drive-axles with differential, whether or not provided with other transmission components:		
8708.50.41	----For the tractors of 8701.10.00, 8701.30.00, 8701.90.1 or 8701.90.90	0%	0
8708.50.42	----Other, for use in the assembly or manufacture of passenger motor vehicles	5%	3
8708.50.43	----Other,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3
8708.50.49	----Other	5%	3
8708.50.5	---Parts of goods of 8708.50.4:		
8708.50.51	----For the tractors of 8701.10.00, 8701.30.00, 8701.90.1 or 8701.90.90	0%	0
8708.50.52	----Other,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3
8708.50.59	----Other	5%	3
8708.50.6	---Non-driving axles and parts thereof:		
8708.50.61	----For the tractors of 8701.10.00, 8701.30.00, 8701.90.1 or 8701.90.90	0%	0
8708.50.62	----Other,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3
8708.50.69	----Other	5%	3
8708.70	-Road wheels an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8708.70.30	---For the tractors of 8701.10.00, 8701.90.1 or 8701.90.90	0%	0
8708.70.9	---Other:		
8708.70.91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3
8708.70.99	----Other	5%	3
8708.80	-Suspension systems and parts thereof (including shock-absorbers):		
8708.80.4	---Suspension shock-absorbers:		
8708.80.41	----For the tractors of 8701.10.00, 8701.30.00, 8701.90.1 or 8701.90.90	0%	0
8708.80.42	----Other,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3
8708.80.49	----Other	5%	3
8708.80.9	---Other:		
8708.80.91	----For the tractors of 8701.10.00, 8701.30.00, 8701.90.1 or 8701.90.90	0%	0
8708.80.92	----Other,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3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708.80.99	----Other	5%	3
8708.9	-Other parts and accessories:		
8708.91	--Radiators and parts thereof:		
8708.91.3	---Radiators:		
8708.91.31	----For the tractors of 8701.90.90	5%	0
8708.91.32	----For the tractors of 8701.10.00, 8701.30.00 or 8701.90.1	0%	0
8708.91.33	----Other,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3
8708.91.39	----Other	5%	3
8708.91.4	---Parts of goods of 8708.91.3:		
8708.91.41	----For the tractors of 8701.10.00, 8701.30.00, 8701.90.1 or 8701.90.90	0%	0
8708.91.42	----Other,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3
8708.91.49	----Other	5%	3
8708.92	--Silencers (mufflers) and exhaust pipes; parts thereof:		
8708.92.4	---Silencers (mufflers) and exhaust pipes:		
8708.92.41	----For the tractors of 8701.10.00, 8701.30.00, 8701.90.1 or 8701.90.90	0%	0
8708.92.42	----Other,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3
8708.92.49	----Other	5%	3
8708.92.5	---Parts of goods of 8708.92.4:		
8708.92.51	----For the tractors of 8701.10.00, 8701.30.00, 8701.90.1 or 8701.90.90	0%	0
8708.92.52	----Other,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3
8708.92.59	----Other	5%	3
8708.93	--Clutches and parts thereof:		
8708.93.20	---For the tractors of 8701.10.00, 8701.30.00, 8701.90.1 or 8701.90.90	0%	0
8708.93.30	---Other, for use in the assembly or manufacture of passenger motor vehicles	5%	3
8708.93.9	---Other:		
8708.93.91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3
8708.93.99	----Other	5%	3
8708.94	--Steering wheels, steering columns and steering boxes; parts thereof:		
8708.94.4	---Steering wheels, steering columns and steering boxes:		
8708.94.41	----For the tractors of 8701.10.00, 8701.30.00, 8701.90.1 or 8701.90.90	0%	0
8708.94.42	----Other,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3
8708.94.49	----Other	5%	3
8708.94.5	---Parts of goods of 8708.94.4:		
8708.94.51	----For the tractors of 8701.10.00, 8701.30.00, 8701.90.1 or 8701.90.90	0%	0
8708.94.52	----Other,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3
8708.94.59	----Other	5%	3
8708.95	--Safety airbags with inflater system; parts thereof:		
8708.95.10	---For the tractors of 8701.10.00, 8701.30.00, 8701.90.1 or 8701.90.90	0%	0
8708.95.20	---Other,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3
8708.95.90	---Other	5%	3
8708.99	--Other:		
8708.99.20	---For the tractors of 8701.10.00, 8701.30.00, 8701.90.1 or 8701.90.90	0%	0
8708.99.30	---Chassis, for use in the assembly or manufacture of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8708.99.9	---Other:		
8708.99.91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3
8708.99.99	----Other	5%	3
8709	WORKS TRUCKS, SELF-PROPELLED, NOT FITTED WITH LIFTING OR HANDLING EQUIPMENT, OF THE TYPE USED IN FACTORIES, WAREHOUSES, DOCK AREAS OR AIRPORTS FOR SHORT DISTANCE TRANSPORT OF GOODS; TRACTORS OF THE TYPE USED ON RAILWAY STATION PLATFORMS; PARTS OF THE FOREGOING VEHICLES:		
8709.1	-Vehicles:		
8709.11.00	--Electrical	5%	0
8709.19.00	--Other	5%	0
8709.90.00	-Parts	0%	0
8710.00.00	TANKS AND OTHER ARMOURED FIGHTING VEHICLES, MOTORISED, WHETHER OR NOT FITTED WITH WEAPONS, AND PARTS OF SUCH VEHICLES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711	MOTORCYCLES (INCLUDING MOPEDS) AND CYCLES FITTED WITH AN AUXILIARY MOTOR, WITH OR WITHOUT SIDE-CARS; SIDE-CARS:		
8711.10.00	-With reciprocating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 of a cylinder capacity not exceeding 50 cm3	0%	0
8711.20.00	-With reciprocating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50 cm3 but not exceeding 250 cm3	0%	0
8711.30.00	-With reciprocating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250 cm3 but not exceeding 500 cm3	0%	0
8711.40.00	-With reciprocating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500 cm3 but not exceeding 800 cm3	0%	0
8711.50.00	-With reciprocating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800 cm3	0%	0
8711.90.00	-Other	5%	0
8712.00.00	BICYCLES AND OTHER CYCLES (INCLUDING DELIVERY TRICYCLES), NOT MOTORISED	5%	0
8713	CARRIAGES FOR DISABLED PERSONS, WHETHER OR NOT MOTORISED OR OTHERWISE MECHANICALLY PROPELLED:		
8713.10.00	-Not mechanically propelled	0%	0
8713.90.00	-Other	0%	0
8714	PARTS AND ACCESSORIES OF VEHICLES OF 8711 TO 8713:		
8714.10	-Of motorcycles (including mopeds):		
8714.10.10	---Exhaust systems and parts thereof	5%	0
8714.10.90	---Other	0%	0
8714.20.00	-Of carriages for disabled persons	0%	0
8714.9	-Other:		
8714.91.00	--Frames and forks, and parts thereof	5%	0
8714.92.00	--Wheel rims and spokes	0%	0
8714.93.00	--Hubs, other than coaster braking hubs and hub brakes, and free-wheel sprocket-wheels	0%	0
8714.94.00	--Brakes, including coaster braking hubs and hub brakes, and parts thereof	0%	0
8714.95.00	--Saddles	0%	0
8714.96.00	--Pedals and crank-gear, and parts thereof	0%	0
8714.99.00	--Other	0%	0
8715.00.00	BABY CARRIAGES AND PARTS THEREOF	0%	0
8716	TRAILERS AND SEMI-TRAILERS; OTHER VEHICLES, NOT MECHANICALLY PROPELLED; PARTS THEREOF:		
8716.10.00	-Trailers and semi-trailers of the caravan type, for housing or camping	5%	0
8716.20.00	-Self-loading or self-unloading trailers and semi-trailers for agricultural purposes	5%	0
8716.3	-Other trailers and semi-trailers for the transport of goods:		
8716.31.00	--Tanker trailers and tanker semi-trailers	5%	0
8716.39.00	--Other	5%	0
8716.40.00	-Other trailers and semi-trailers	5%	0
8716.80.00	-Other vehicles	5%	0
8716.90.00	-Parts	5%	0
88	AIRCRAFT, SPACECRAFT, AND PARTS THEREOF		
8801.00.00	BALLOONS AND DIRIGIBLES; GLIDERS, HANG GLIDERS AND OTHER NON-POWERED AIRCRAFT	0%	0
8802	OTHER AIRCRAFT (FOR EXAMPLE, HELICOPTERS, AEROPLANES); SPACECRAFT (INCLUDING SATELLITES) AND SUBORBITAL AND SPACECRAFT LAUNCH VEHICLES:		
8802.1	-Helicopters:		
8802.11.00	--Of an unladen weight not exceeding 2 000 kg	0%	0
8802.12.00	--Of an unladen weight exceeding 2 000 kg	0%	0
8802.20.00	-Aeroplanes and other aircraft, of an unladen weight not exceeding 2 000 kg	0%	0
8802.30.00	-Aeroplanes and other aircraft, of an unladen weight exceeding 2 000 kg but not exceeding 15 000 kg	0%	0
8802.40.00	-Aeroplanes and other aircraft, of an unladen weight exceeding 15 000 kg	0%	0
8802.60.00	-Spacecraft (including satellites) and suborbital and spacecraft launch vehicles	0%	0
8803	PARTS OF GOODS OF 8801 OR 8802:		
8803.10.00	-Propellers and rotors and parts thereof	0%	0
8803.20.00	-Under-carriages and parts thereof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803.30.00	-Other parts of aeroplanes or helicopters	0%	0
8803.90.00	-Other	0%	0
8804.00.00	PARACHUTES (INCLUDING DIRIGIBLE PARACHUTES AND PARAGLIDERS) AND ROTOCHUTES; PARTS THEREOF AND ACCESSORIES THERETO	0%	0
8805	AIRCRAFT LAUNCHING GEAR; DECK-ARRESTOR OR SIMILAR GEAR; GROUND FLYING TRAINERS; PARTS OF THE FOREGOING ARTICLES:		
8805.10.00	-Aircraft launching gear and parts thereof; deck-arrestor or similar gear and parts thereof	0%	0
8805.2	-Ground flying trainers and parts thereof:		
8805.21.00	--Air combat simulators and parts thereof	0%	0
8805.29.00	--Other	0%	0
89	SHIPS, BOATS AND FLOATING STRUCTURES		
8901	CRUISE SHIPS, EXCURSION BOATS, FERRY-BOATS, CARGO SHIPS, BARGES AND SIMILAR VESSELS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OR GOODS:		
8901.10	-Cruise ships, excursion boats and similar vessels princip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ferry-boats of all kinds:		
8901.10.10	---Not exceeding 150 gross construction tons	5%	0
8901.10.90	---Other	0%	0
8901.20	-Tankers:		
8901.20.10	---Not exceeding 150 gross construction tons	5%	0
8901.20.90	---Other	0%	0
8901.30	-Refrigerated vessels, other than those of 8901.20:		
8901.30.10	---Not exceeding 150 gross construction tons	5%	0
8901.30.90	---Other	0%	0
8901.90	-Other vessels for the transport of goods and other vessels for the transport of both persons and goods:		
8901.90.10	---Not exceeding 150 gross construction tons	5%	0
8901.90.90	---Other	0%	0
8902	FISHING VESSELS; FACTORY SHIPS AND OTHER VESSELS FOR PROCESSING OR PRESERVING FISHERY PRODUCTS:		
8902.00.10	---Not exceeding 150 gross construction tons	5%	0
8902.00.90	---Other	0%	0
8903	YACHTS AND OTHER VESSELS FOR PLEASURE OR SPORTS; ROWING BOATS AND CANOES:		
8903.10.00	-Inflatable	5%	0
8903.9	-Other:		
8903.91	--Sailboats, with or without auxiliary motor:		
8903.91.10	---Not exceeding 150 gross construction tons	5%	0
8903.91.90	---Other	0%	0
8903.92	--Motorboats, other than outboard motorboats:		
8903.92.10	---Not exceeding 150 gross construction tons	5%	0
8903.92.90	---Other	0%	0
8903.99	--Other:		
8903.99.10	---Not exceeding 150 gross construction tons	5%	0
8903.99.90	---Other	0%	0
8904	TUGS AND PUSHER CRAFT:		
8904.00.10	---Not exceeding 150 gross construction tons	5%	0
8904.00.90	---Other	0%	0
8905	LIGHT-VESSELS, FIRE-FLOATS, DREDGERS, FLOATING CRANES, AND OTHER VESSELS THE NAVIGABILITY OF WHICH IS SUBSIDIARY TO THEIR MAIN FUNCTION; FLOATING DOCKS; FLOATING OR SUBMERSIBLE DRILLING OR PRODUCTION PLATFORMS:		
8905.10	-Dredgers:		
8905.10.10	---Not exceeding 150 gross construction tons	5%	0
8905.10.90	---Other	0%	0
8905.20	-Floating or submersible drilling or production platforms:		
8905.20.10	---Not exceeding 150 gross construction tons	5%	0
8905.20.90	---Other	0%	0
8905.90	-Other:		
8905.90.10	---Not exceeding 150 gross construction tons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8905.90.90	---Other	0%	0
8906	OTHER VESSELS, INCLUDING WARSHIPS AND LIFEBOATS OTHER THAN ROWING BOATS:		
8906.10	-Warships:		
8906.10.10	---Not exceeding 150 gross construction tons	5%	0
8906.10.90	---Other	0%	0
8906.90	-Other:		
8906.90.10	---Not exceeding 150 gross construction tons	5%	0
8906.90.90	---Other	0%	0
8907	OTHER FLOATING STRUCTURES (FOR EXAMPLE, RAFTS, TANKS, COFFER-DAMS, LANDING-STAGES, BUOYS AND BEACONS):		
8907.10.00	-Inflatable rafts	5%	0
8907.90.00	-Other	5%	0
8908.00.00	VESSELS AND OTHER FLOATING STRUCTURES FOR BREAKING UP	0%	0
90	OPTICAL,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MEASURING, CHECKING, PRECISION, MEDICAL OR SURGICAL INSTRUMENTS AND APPARATU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9001	OPTICAL FIBRES AND OPTICAL FIBRE BUNDLES; OPTICAL FIBRE CABLES OTHER THAN THOSE OF 8544; SHEETS AND PLATES OF POLARISING MATERIAL; LENSES (INCLUDING CONTACT LENSES), PRISMS, MIRRORS AND OTHER OPTICAL ELEMENTS, OF ANY MATERIAL, UNMOUNTED, OTHER THAN SUCH ELEMENTS OF GLASS NOT OPTICALLY WORKED:		
9001.10.00	-Optical fibres, optical fibre bundles and cables	5%	0
9001.20.00	-Sheets and plates of polarising material	0%	0
9001.30	-Contact lenses:		
9001.30.10	---Ophthalmic powered	5%	0
9001.30.90	---Other	5%	0
9001.40.00	-Spectacle lenses of glass	5%	0
9001.50.00	-Spectacle lenses of other materials	5%	0
9001.90	-Other:		
9001.90.30	---Goods, as follows: (a) semi-finished lens blanks for spectacles; (b) shaped eyepieces, not powered, for goggles and the like; (c) other than of glass, of a kind used with motor vehicles; (d) other articles of glass, other than prisms, mirrors or powered lenses	5%	0
9001.90.90	---Other	0%	0
9002	LENSES, PRISMS, MIRRORS AND OTHER OPTICAL ELEMENTS, OF ANY MATERIAL, MOUNTED, BEING PARTS OF OR FITTINGS FOR INSTRUMENTS OR APPARATUS, OTHER THAN SUCH ELEMENTS OF GLASS NOT OPTICALLY WORKED:		
9002.1	-Objective lenses:		
9002.11.00	--For cameras, projectors or photographic enlargers or reducers	0%	0
9002.19.00	--Other	0%	0
9002.20.00	-Filters	0%	0
9002.90.00	-Other	0%	0
9003	FRAMES AND MOUNTINGS FOR SPECTACLES, GOGGLES OR THE LIKE, AND PARTS THEREOF:		
9003.1	-Frames and mountings:		
9003.11.00	--Of plastics	5%	0
9003.19.00	--Of other materials	5%	0
9003.90.00	-Parts	5%	0
9004	SPECTACLES, GOGGLES AND THE LIKE, CORRECTIVE, PROTECTIVE OR OTHER:		
9004.10.00	-Sunglasses	5%	0
9004.90.00	-Other	5%	0
9005	BINOCULARS, MONOCULARS, OTHER OPTICAL TELESCOPES, AND MOUNTINGS THEREFOR; OTHER ASTRONOMICAL INSTRUMENTS AND MOUNTINGS THEREFOR, BUT NOT INCLUDING INSTRUMENTS FOR RADIO-ASTRONOMY:		
9005.10.00	-Binoculars	0%	0
9005.80.00	-Other instruments	0%	0
9005.90.00	-Parts and accessories (including mountings)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9006	PHOTOGRAPHIC (OTHER THAN CINEMATOGRAPHIC) CAMERAS; PHOTOGRAPHIC FLASHLIGHT APPARATUS AND FLASHBULBS OTHER THAN DISCHARGE LAMPS OF 8539:		
9006.10	-Cameras of a kind used for preparing printing plates or cylinders:		
9006.10.10	---Cameras used solely or principally in the graphic arts industries for the production of line, continuous tone or half-tone images	5%	0
9006.10.90	---Other	0%	0
9006.30.00	-Cameras specially designed for underwater use, for aerial survey or for medical or surgical examination of internal organs; comparison cameras for forensic or criminological purposes	0%	0
9006.40.00	-Instant print cameras	0%	0
9006.5	-Other cameras:		
9006.51.00	--With a through-the-lens viewfinder (single lens reflex (SLR)), for roll film of a width not exceeding 35 mm	0%	0
9006.52.00	--Other, for roll film of a width less than 35 mm	0%	0
9006.53.00	--Other, for roll film of a width of 35 mm	0%	0
9006.59.00	--Other	0%	0
9006.6	-Photographic flashlight apparatus and flashbulbs:		
9006.61.00	--Discharge lamp ("electronic") flashlight apparatus	0%	0
9006.69.00	--Other	0%	0
9006.9	-Parts and accessories:		
9006.91.00	--For cameras	0%	0
9006.99.00	--Other	0%	0
9007	CINEMATOGRAPHIC CAMERAS AND PROJECTORS,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SOUND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9007.10.00	-Cameras	0%	0
9007.20.00	-Projectors	0%	0
9007.9	-Parts and accessories:		
9007.91.00	--For cameras	0%	0
9007.92.00	--For projectors	0%	0
9008	IMAGE PROJECTORS, OTHER THAN CINEMATOGRAPHIC; PHOTOGRAPHIC (OTHER THAN CINEMATOGRAPHIC) ENLARGERS AND REDUCERS:		
9008.50	-Projectors, enlargers and reducers:		
9008.50.10	---Overhead projectors	5%	0
9008.50.90	---Other	0%	0
9008.90.00	-Parts and accessories	0%	0
9010	APPARATUS AND EQUIPMENT FOR PHOTOGRAPHIC (INCLUDING CINEMATOGRAPHIC) LABORATORIE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NEGATOSCOPES; PROJECTION SCREENS:		
9010.10.00	-Apparatus and equipment for automatically developing photographic (including cinematographic) film or paper in rolls or for automatically exposing developed film to rolls of photographic paper	0%	0
9010.50	-Other apparatus and equipment for photographic (including cinematographic) laboratories; negatoscopes:		
9010.50.10	---Goods, as follows: (a) layout tables; (b) photographic silver recovery apparatus; (c) vacuum frames	0%	0
9010.50.20	---Apparatus and equipment for the processing of sensitised film or paper, NSA	0%	0
9010.50.90	---Other	0%	0
9010.60.00	-Projection screens	5%	0
9010.90	-Parts and accessories:		
9010.90.10	---For goods of 9010.50.90	0%	0
9010.90.20	---For goods of 9010.50.20 or 9010.60.00	5%	0
9010.90.90	---Other	5%	0
9011	COMPOUND OPTICAL MICROSCOPES, INCLUDING THOSE FOR PHOTOMICROGRAPHY, CINEPHOTOMICROGRAPHY OR MICROPROJECTION:		
9011.10.00	-Stereoscopic microscopes	0%	0
9011.20.00	-Other microscopes, for photomicrography, cinephotomicrography or microprojection	0%	0
9011.80.00	-Other microscopes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9011.90.00	-Parts and accessories	0%	0
9012	MICROSCOPES OTHER THAN OPTICAL MICROSCOPES; DIFFRACTION APPARATUS:		
9012.10.00	-Microscopes other than optical microscopes and diffraction apparatus	0%	0
9012.90.00	-Parts and accessories	0%	0
9013	LIQUID CRYSTAL DEVICES NOT CONSTITUTING ARTICLES PROVIDED FOR MORE SPECIFICALLY IN OTHER HEADINGS; LASERS, OTHER THAN LASER DIODES; OTHER OPTICAL APPLIANCES AND INSTRUMENT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9013.10.00	-Telescopic sights for fitting to arms; periscopes; telescopes designed to form parts of machines, appliances, instruments or apparatus of this Chapter or Section XVI	0%	0
9013.20.00	-Lasers, other than laser diodes	0%	0
9013.80.00	-Other devices, appliances and instruments	0%	0
9013.90.00	-Parts and accessories	0%	0
9014	DIRECTION FINDING COMPASSES; OTHER NAVIGATIONAL INSTRUMENTS AND APPLIANCES:		
9014.10.00	-Direction finding compasses	0%	0
9014.20.00	-Instruments and appliances for aeronautical or space navigation (other than compasses)	0%	0
9014.80.00	-Other instruments and appliances	0%	0
9014.90.00	-Parts and accessories	0%	0
9015	SURVEYING (INCLUDING PHOTOGRAMMETRICAL SURVEYING), HYDROGRAPHIC, OCEANOGRAPHIC, HYDROLOGICAL, METEOROLOGICAL OR GEOPHYSICAL INSTRUMENTS AND APPLIANCES, EXCLUDING COMPASSES; RANGEFINDERS:		
9015.10.00	-Rangefinders	0%	0
9015.20.00	-Theodolites and tachymeters (tacheometers)	0%	0
9015.30.00	-Levels	0%	0
9015.40.00	-Photogrammetrical surveying instruments and appliances	0%	0
9015.80.00	-Other instruments and appliances	0%	0
9015.90.00	-Parts and accessories	0%	0
9016.00.00	BALANCES OF A SENSITIVITY OF 5 cg OR BETTER, WITH OR WITHOUT WEIGHTS	0%	0
9017	DRAWING, MARKING-OUT OR MATHEMATICAL CALCULATING INSTRUMENTS (FOR EXAMPLE, DRAFTING MACHINES, PANTOGRAPHS, PROTRACTORS, DRAWING SETS, SLIDE RULES, DISC CALCULATORS); INSTRUMENTS FOR MEASURING LENGTH, FOR USE IN THE HAND (FOR EXAMPLE, MEASURING RODS AND TAPES, MICROMETERS, CALLIPER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9017.10.00	-Drafting tables and machines, whether or not automatic	0%	0
9017.20	-Other drawing, marking-out or mathematical calculating instruments:		
9017.20.10	---Goods, as follows: (a) disc calculators and the like; (b) drawing curves; (c) parallel rules of plastic; (d) protractors; (e) set squares; (f) stencils	5%	0
9017.20.90	---Other	0%	0
9017.30.00	-Micrometers, callipers and gauges	0%	0
9017.80	-Other instruments:		
9017.80.20	---Goods, as follows: (a) graduated rules of wood or plastic, other than folding rules; (b) steel tape measures	5%	0
9017.80.80	---Other	0%	0
9017.90.00	-Parts and accessories	0%	0
9018	INSTRUMENTS AND APPLIANCES USED IN MEDICAL, SURGICAL, DENTAL OR VETERINARY SCIENCES, INCLUDING SCINTIGRAPHIC APPARATUS, OTHER ELECTRO-MEDICAL APPARATUS AND SIGHT-TESTING INSTRUMENTS:		
9018.1	-Electro-diagnostic apparatus (including apparatus for functional exploratory examination or for checking physiological parameters):		
9018.11.00	--Electro-cardiographs	0%	0
9018.12.00	--Ultrasonic scanning apparatus	0%	0
9018.13.00	--Magnetic resonance imaging apparatus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9018.14.00	--Scintigraphic apparatus	0%	0
9018.19.00	--Other	0%	0
9018.20.00	-Ultra-violet or infra-red ray apparatus	0%	0
9018.3	-Syringes, needles, catheters, cannulae and the like:		
9018.31.00	--Syringes, with or without needles	0%	0
9018.32.00	--Tubular metal needles and needles for sutures	0%	0
9018.39.00	--Other	0%	0
9018.4	-Other instruments and appliances, used in dental sciences:		
9018.41.00	--Dental drill engines, whether or not combined on a single base with other dental equipment	0%	0
9018.49.00	--Other	0%	0
9018.50.00	-Other ophthalmic instruments and appliances	0%	0
9018.90.00	-Other instruments and appliances	0%	0
9019	MECHANO-THERAPY APPLIANCES; MASSAGE APPARATUS; PSYCHOLOGICAL APTITUDE-TESTING APPARATUS; OZONE THERAPY, OXYGEN THERAPY, AEROSOL THERAPY, ARTIFICIAL RESPIRATION OR OTHER THERAPEUTIC RESPIRATION APPARATUS:		
9019.10.00	-Mechano-therapy appliances; massage apparatus; psychological aptitude-testing apparatus	0%	0
9019.20.00	-Ozone therapy, oxygen therapy, aerosol therapy, artificial respiration or other therapeutic respiration apparatus	0%	0
9020.00.00	OTHER BREATHING APPLIANCES AND GAS MASKS, EXCLUDING PROTECTIVE MASKS HAVING NEITHER MECHANICAL PARTS NOR REPLACEABLE FILTERS	0%	0
9021	ORTHOPAEDIC APPLIANCES, INCLUDING CRUTCHES, SURGICAL BELTS AND TRUSSES; SPLINTS AND OTHER FRACTURE APPLIANCES; ARTIFICIAL PARTS OF THE BODY; HEARING AIDS AND OTHER APPLIANCES WHICH ARE WORN OR CARRIED, OR IMPLANTED IN THE BODY, TO COMPENSATE FOR A DEFECT OR DISABILITY:		
9021.10	-Orthopaedic or fracture appliances:		
9021.10.10	---Footwear and special insoles made to measure for a specific orthopaedic disorder	0%	0
9021.10.20	---Footwear, NSA, excluding parts, designed to correct orthopaedic conditions	5%	5
9021.10.30	---Special insoles, NSA, excluding parts, designed to correct orthopaedic conditions	5%	0
9021.10.4	---Parts for goods of 9021.10.20 or 9021.10.30:		
9021.10.41	----Of metal	5%	0
9021.10.49	----Other	5%	0
9021.10.90	---Other	0%	0
9021.2	-Artificial teeth and dental fittings:		
9021.21.00	--Artificial teeth	0%	0
9021.29.00	--Other	0%	0
9021.3	-Other artificial parts of the body:		
9021.31.00	--Artificial joints	0%	0
9021.39.00	--Other	0%	0
9021.40.00	-Hearing aids, excluding parts and accessories	0%	0
9021.50.00	-Pacemakers for stimulating heart muscles, excluding parts and accessories	0%	0
9021.90.00	-Other	0%	0
9022	APPARATUS BASED ON THE USE OF X-RAYS OR OF ALPHA, BETA OR GAMMA RADIATIONS, WHETHER OR NOT FOR MEDICAL, SURGICAL, DENTAL OR VETERINARY USES, INCLUDING RADIOGRAPHY OR RADIOTHERAPY APPARATUS, X-RAY TUBES AND OTHER X-RAY GENERATORS, HIGH TENSION GENERATORS, CONTROL PANELS AND DESKS, SCREENS, EXAMINATION OR TREATMENT TABLES, CHAIRS AND THE LIKE:		
9022.1	-Apparatus based on the use of X-rays, whether or not for medical, surgical, dental or veterinary uses, including radiography or radiotherapy apparatus:		
9022.12.00	--Computed tomography apparatus	0%	0
9022.13.00	--Other, for dental uses	0%	0
9022.14.00	--Other, for medical, surgical or veterinary uses	0%	0
9022.19.00	--For other uses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9022.2	-Apparatus based on the use of alpha, beta or gamma radiations, whether or not for medical, surgical, dental or veterinary uses, including radiography or radiotherapy apparatus:		
9022.21.00	--For medical, surgical, dental or veterinary uses	0%	0
9022.29.00	--For other uses	0%	0
9022.30.00	-X-ray tubes	0%	0
9022.90.00	-Other, including parts and accessories	0%	0
9023.00.00	INSTRUMENTS, APPARATUS AND MODELS, DESIGNED FOR DEMONSTRATIONAL PURPOSES (FOR EXAMPLE, IN EDUCATION OR EXHIBITIONS), UNSUITABLE FOR OTHER USES	0%	0
9024	MACHINES AND APPLIANCES FOR TESTING THE HARDNESS, STRENGTH, COMPRESSIBILITY, ELASTICITY OR OTHER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S (FOR EXAMPLE, METALS, WOOD, TEXTILES, PAPER, PLASTICS):		
9024.10.00	-Machines and appliances for testing metals	0%	0
9024.80.00	-Other machines and appliances	0%	0
9024.90.00	-Parts and accessories	0%	0
9025	HYDROMETERS AND SIMILAR FLOATING INSTRUMENTS, THERMOMETERS, PYROMETERS, BAROMETERS, HYGROMETERS AND PSYCHROMETERS, RECORDING OR NOT, AND ANY COMBINATION OF THESE INSTRUMENTS:		
9025.1	-Thermometers and pyrometers, not combined with other instruments:		
9025.11.00	--Liquid-filled, for direct reading	0%	0
9025.19.00	--Other	0%	0
9025.80.00	-Other instruments	0%	0
9025.90.00	-Parts and accessories	0%	0
9026	INSTRUMENTS AND APPARATUS FOR MEASURING OR CHECKING THE FLOW, LEVEL, PRESSURE OR OTHER VARIABLES OF LIQUIDS OR GASES (FOR EXAMPLE, FLOW METERS, LEVEL GAUGES, MANOMETERS, HEAT METERS), EXCLUDING INSTRUMENTS AND APPARATUS OF 9014, 9015, 9028 or 9032:		
9026.10	-For measuring or checking the flow or level of liquids:		
9026.10.20	---Gauges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9026.10.80	---Other	0%	0
9026.20	-For measuring or checking pressure:		
9026.20.20	---Gauges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9026.20.80	---Other	0%	0
9026.80	-Other instruments or apparatus:		
9026.80.20	---Gauges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9026.80.80	---Other	0%	0
9026.90.00	-Parts and accessories	0%	0
9027	INSTRUMENTS AND APPARATUS FOR PHYSICAL OR CHEMICAL ANALYSIS (FOR EXAMPLE, POLARIMETERS, REFRACTOMETERS, SPECTROMETERS, GAS OR SMOKE ANALYSIS APPARATUS); INSTRUMENTS AND APPARATUS FOR MEASURING OR CHECKING VISCOSITY, POROSITY, EXPANSION, SURFACE TENSION OR THE LIKE; INSTRUMENTS AND APPARATUS FOR MEASURING OR CHECKING QUANTITIES OF HEAT, SOUND OR LIGHT (INCLUDING EXPOSURE METERS); MICROTOMES:		
9027.10.00	-Gas or smoke analysis apparatus	0%	0
9027.20.00	-Chromatographs and electrophoresis instruments	0%	0
9027.30.00	-Spectrometers, spectrophotometers and spectrographs using optical radiations (UV, visible, IR)	0%	0
9027.50.00	-Other instruments and apparatus using optical radiations (UV, visible, IR)	0%	0
9027.80.00	-Other instruments and apparatus	0%	0
9027.90.00	-Microtomes; parts and accessories	0%	0
9028	GAS, LIQUID OR ELECTRICITY SUPPLY OR PRODUCTION METERS, INCLUDING CALIBRATING METERS THEREFOR:		
9028.10	-Gas meters: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9028.10.10	---Of the household supply kind	5%	0
9028.10.90	---Other	0%	0
9028.20	-Liquid meters:		
9028.20.10	---Water meters, as follows: (a) of the inferential kind; (b) of the positive kind not exceeding 100 mm diameter in size	5%	0
9028.20.90	---Other	0%	0
9028.30.00	-Electricity meters	5%	0
9028.90.00	-Parts and accessories	0%	0
9029	REVOLUTION COUNTERS, PRODUCTION COUNTERS, TAXIMETERS, MILEOMETERS, PEDOMETERS AND THE LIKE; SPEED INDICATORS AND TACHOMETERS, OTHER THAN THOSE OF 9014 OR 9015; STROBOSCOPES:		
9029.10	-Revolution counters, production counters, taximeters, mileometers, pedometers and the like:		
9029.10.2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9029.10.80	---Other	0%	0
9029.20	-Speed indicators and tachometers; stroboscopes:		
9029.20.1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9029.20.90	---Other	0%	0
9029.90	-Parts and accessories:		
9029.90.10	---For goods of 9029.10.20 or 9029.20.10	5%	5
9029.90.90	---Other	0%	0
9030	OSCILLOSCOPES, SPECTRUM ANALYSERS AND OTHER INSTRUMENTS AND APPARATUS FOR MEASURING OR CHECKING ELECTRICAL QUANTITIES, EXCLUDING METERS OF 9028; INSTRUMENTS AND APPARATUS FOR MEASURING OR DETECTING ALPHA, BETA, GAMMA, X-RAY, COSMIC OR OTHER IONISING RADIATIONS:		
9030.10.00	-Instruments and apparatus for measuring or detecting ionising radiations	0%	0
9030.20.00	-Oscilloscopes and oscillographs	0%	0
9030.3	-Other instruments and apparatus, for measuring or checking voltage, current, resistance or power:		
9030.31.00	--Multimeters without a recording device	0%	0
9030.32.00	--Multimeters with a recording device	0%	0
9030.33.00	--Other, without a recording device	0%	0
9030.39.00	--Other, with a recording device	0%	0
9030.40.00	-Other instruments and apparatus, specially designed for telecommunications (for example, cross-talk meters, gain measuring instruments, distortion factor meters, psophometers)	0%	0
9030.8	-Other instruments and apparatus:		
9030.82.00	--For measuring or checking semiconductor wafers or devices	0%	0
9030.84.00	--Other, with a recording device	0%	0
9030.89.00	--Other	0%	0
9030.90.00	-Parts and accessories	0%	0
9031	MEASURING OR CHECKING INSTRUMENTS, APPLIANCES AND MACHINE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PROFILE PROJECTORS:		
9031.10	-Machines for balancing mechanical parts:		
9031.10.20	---Motor vehicle wheel balancers of the static kind	5%	0
9031.10.80	---Other	0%	0
9031.20	-Test benches:		
9031.20.10	---Electrical,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5%	0
9031.20.90	---Other	0%	0
9031.4	-Other optical instruments and appliances:		
9031.41.00	--For inspecting semiconductor wafers or devices or for inspecting photomasks or reticles used in manufacturing semiconductor devices	0%	0
9031.49.00	--Other	0%	0
9031.80.00	-Other instruments, appliances and machines	0%	0
9031.90.00	-Parts and accessories	0%	0
9032	AUTOMATIC REGULATING OR CONTROLLING INSTRUMENTS AND APPARATUS:		
9032.10.00	-Thermostats	0%	0
9032.20.00	-Manostats	0%	0
9032.8	-Other instruments and apparatus:		
9032.81.00	--Hydraulic or pneumatic	0%	0
9032.89	--Other: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9032.89.1	---Automatic voltage regulators of a kind commonly used with motor vehicles, for 6 V or 12 V systems:		
9032.89.11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9032.89.19	----Other	0%	0
9032.89.80	---Other	0%	0
9032.90	-Parts and accessories:		
9032.90.20	---Of a kind used as components in passenger motor vehicles	5%	5
9032.90.80	---Other	0%	0
9033.00.00	PARTS AND ACCESSORIE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FOR MACHINES, APPLIANCES, INSTRUMENTS OR APPARATUS OF CHAPTER 90	0%	0
91	CLOCKS AND WATCHES AND PARTS THEREOF		
9101	WRIST-WATCHES, POCKET-WATCHES AND OTHER WATCHES, INCLUDING STOP-WATCHES, WITH CASE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9101.1	-Wrist-watches, electrically operated,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a stop-watch facility:		
9101.11.00	--With mechanical display only	0%	0
9101.19.00	--Other	0%	0
9101.2	-Other wrist-watches,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a stop-watch facility:		
9101.21.00	--With automatic winding	0%	0
9101.29.00	--Other	0%	0
9101.9	-Other:		
9101.91.00	--Electrically operated	0%	0
9101.99.00	--Other	0%	0
9102	WRIST-WATCHES, POCKET-WATCHES AND OTHER WATCHES, INCLUDING STOP-WATCHES, OTHER THAN THOSE OF 9101:		
9102.1	-Wrist-watches, electrically operated,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a stop-watch facility:		
9102.11.00	--With mechanical display only	0%	0
9102.12.00	--With opto-electronic display only	0%	0
9102.19.00	--Other	0%	0
9102.2	-Other wrist-watches,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a stop-watch facility:		
9102.21.00	--With automatic winding	0%	0
9102.29.00	--Other	0%	0
9102.9	-Other:		
9102.91.00	--Electrically operated	0%	0
9102.99.00	--Other	0%	0
9103	CLOCKS WITH WATCH MOVEMENTS, EXCLUDING CLOCKS OF 9104.00.00:		
9103.10.00	-Electrically operated	0%	0
9103.90.00	-Other	0%	0
9104.00.00	INSTRUMENT PANEL CLOCKS AND CLOCKS OF A SIMILAR TYPE FOR VEHICLES, AIRCRAFT, SPACECRAFT OR VESSELS	0%	0
9105	OTHER CLOCKS:		
9105.1	-Alarm clocks:		
9105.11.00	--Electrically operated	0%	0
9105.19.00	--Other	0%	0
9105.2	-Wall clocks:		
9105.21.00	--Electrically operated	0%	0
9105.29.00	--Other	0%	0
9105.9	-Other:		
9105.91.00	--Electrically operated	0%	0
9105.99.00	--Other	0%	0
9106	TIME OF DAY RECORDING APPARATUS AND APPARATUS FOR MEASURING, RECORDING OR OTHERWISE INDICATING INTERVALS OF TIME, WITH CLOCK OR WATCH MOVEMENT OR WITH SYNCHRONOUS MOTOR (FOR EXAMPLE, TIME-REGISTERS, TIME-RECORDERS):		
9106.10.00	-Time-registers; time-recorders	5%	0
9106.90.00	-Other	0%	0
9107.00.00	TIME SWITCHES WITH CLOCK OR WATCH MOVEMENT OR WITH SYNCHRONOUS MOTOR	5%	0
9108	WATCH MOVEMENTS, COMPLETE AND ASSEMBLED:		
9108.1	-Electrically operated:		
9108.11.00	--With mechanical display only or with a device to which a mechanical display can be incorporated	0%	0
9108.12.00	--With opto-electronic display only	0%	0
9108.19.00	--Other	0%	0
9108.20.00	-With automatic winding	0%	0
9108.90.00	-Other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9109	CLOCK MOVEMENTS, COMPLETE AND ASSEMBLED:		
9109.10.00	-Electrically operated	0%	0
9109.90.00	-Other	0%	0
9110	COMPLETE WATCH OR CLOCK MOVEMENTS, UNASSEMBLED OR PARTLY ASSEMBLED (MOVEMENT SETS); INCOMPLETE WATCH OR CLOCK MOVEMENTS, ASSEMBLED; ROUGH WATCH OR CLOCK MOVEMENTS:		
9110.1	-Of watches:		
9110.11.00	--Complete movements, unassembled or partly assembled (movement sets)	0%	0
9110.12.00	--Incomplete movements, assembled	0%	0
9110.19.00	--Rough movements	0%	0
9110.90	-Other:		
9110.90.10	---Of goods of 9107.00.00	5%	0
9110.90.90	---Other	0%	0
9111	WATCH CASES AND PARTS THEREOF:		
9111.10.00	-Cases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0%	0
9111.20.00	-Cases of base metal, whether or not gold- or silver-plated	0%	0
9111.80.00	-Other cases	0%	0
9111.90.00	-Parts	0%	0
9112	CLOCK CASES AND CASES OF A SIMILAR TYPE FOR OTHER GOODS OF THIS CHAPTER, AND PARTS THEREOF:		
9112.20.00	-Cases	0%	0
9112.90.00	-Parts	0%	0
9113	WATCH STRAPS, WATCH BANDS AND WATCH BRACELETS, AND PARTS THEREOF:		
9113.10.00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5%	0
9113.20.00	-Of base metal, whether or not gold- or silver-plated	0%	0
9113.90.00	-Other	5%	0
9114	OTHER CLOCK OR WATCH PARTS:		
9114.10.00	-Springs, including hair-springs	0%	0
9114.30.00	-Dials	0%	0
9114.40.00	-Plates and bridges	0%	0
9114.90.00	-Other	0%	0
92	MUSICAL INSTRUMENTS; PARTS AND ACCESSORIES OF SUCH ARTICLES		
9201	PIANOS, INCLUDING AUTOMATIC PIANOS; HARPSICHORDS AND OTHER KEYBOARD STRINGED INSTRUMENTS:		
9201.10.00	-Upright pianos	0%	0
9201.20.00	-Grand pianos	0%	0
9201.90.00	-Other	0%	0
9202	OTHER STRING MUSICAL INSTRUMENTS (FOR EXAMPLE, GUITARS, VIOLINS, HARPS):		
9202.10.00	-Played with a bow	0%	0
9202.90.00	-Other	5%	0
9205	WIND MUSICAL INSTRUMENTS (FOR EXAMPLE, KEYBOARD PIPE ORGANS, ACCORDIONS, CLARINETS, TRUMPETS, BAGPIPES), OTHER THAN FAIRGROUND ORGANS AND MECHANICAL STREET ORGANS:		
9205.10.00	-Brass-wind instruments	0%	0
9205.90.00	-Other	0%	0
9206.00.00	PERCUSSION MUSICAL INSTRUMENTS (FOR EXAMPLE, DRUMS, XYLOPHONES, CYMBALS, CASTANETS, MARACAS)	5%	0
9207	MUSICAL INSTRUMENTS, THE SOUND OF WHICH IS PRODUCED, OR MUST BE AMPLIFIED, ELECTRICALLY (FOR EXAMPLE, ORGANS, GUITARS, ACCORDIONS):		
9207.10.00	-Keyboard instruments, other than accordions	0%	0
9207.90.00	-Other	5%	0
9208	MUSICAL BOXES, FAIRGROUND ORGANS, MECHANICAL STREET ORGANS, MECHANICAL SINGING BIRDS, MUSICAL SAWS AND OTHER MUSICAL INSTRUMENTS NOT FALLING WITHIN ANY OTHER HEADING OF THIS CHAPTER; DECOY CALLS OF ALL KINDS; WHISTLES, CALL HORNS AND OTHER MOUTH-BLOWN SOUND SIGNALLING INSTRUMENTS:		
9208.10.00	-Musical boxes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9208.90.00	-Other	0%	0
9209	PARTS (FOR EXAMPLE, MECHANISMS FOR MUSICAL BOXES) AND ACCESSORIES (FOR EXAMPLE, CARDS, DISCS AND ROLLS FOR MECHANICAL INSTRUMENTS) OF MUSICAL INSTRUMENTS; METRONOMES, TUNING FORKS AND PITCH PIPES OF ALL KINDS:		
9209.30.00	-Musical instrument strings	0%	0
9209.9	-Other:		
9209.91.00	--Parts and accessories for pianos	0%	0
9209.92.00	--Parts and accessories for the musical instruments of 9202	5%	0
9209.94.00	--Parts and accessories for the musical instruments of 9207	0%	0
9209.99.00	--Other	0%	0
93	ARMS AND AMMUNITION;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9301	MILITARY WEAPONS, OTHER THAN REVOLVERS, PISTOLS AND THE ARMS OF 9307.00.00:		
9301.10.00	-Artillery weapons (for example, guns, howitzers and mortars)	0%	0
9301.20.00	-Rocket launchers; flame-throwers; grenade launchers; torpedo tubes and similar projectors	0%	0
9301.90.00	-Other	0%	0
9302.00.00	REVOLVERS AND PISTOLS, OTHER THAN THOSE OF 9303 OR 9304.00.00	0%	0
9303	OTHER FIREARMS AND SIMILAR DEVICES WHICH OPERATE BY THE FIRING OF AN EXPLOSIVE CHARGE (FOR EXAMPLE, SPORTING SHOTGUNS AND RIFLES, MUZZLE-LOADING FIREARMS, VERY PISTOLS AND OTHER DEVICES DESIGNED TO PROJECT ONLY SIGNAL FLARES, PISTOLS AND REVOLVERS FOR FIRING BLANK AMMUNITION, CAPTIVE-BOLT HUMANE KILLERS, LINE-THROWING GUNS):		
9303.10.00	-Muzzle-loading firearms	0%	0
9303.20.00	-Other sporting, hunting or target-shooting shotguns, including combination shotgun-rifles	0%	0
9303.30.00	-Other sporting, hunting or target-shooting rifles	0%	0
9303.90.00	-Other	0%	0
9304.00.00	OTHER ARMS (FOR EXAMPLE, SPRING, AIR OR GAS GUNS AND PISTOLS, TRUNCHEONS), EXCLUDING THOSE OF 9307.00.00	0%	0
9305	PARTS AND ACCESSORIES OF ARTICLES OF 9301 TO 9304.00.00:		
9305.10.00	-Of revolvers or pistols	5%	0
9305.20	-Of shotguns or rifles of 9303:		
9305.20.10	---Shotgun barrels	0%	0
9305.20.90	---Other	5%	0
9305.9	-Other:		
9305.91.00	--Of military weapons of 9301	5%	0
9305.99.00	--Other	5%	0
9306	BOMBS, GRENADES, TORPEDOES, MINES, MISSILES AND SIMILAR MUNITIONS OF WAR AND PARTS THEREOF; CARTRIDGES AND OTHER AMMUNITION AND PROJECTILES AND PARTS THEREOF, INCLUDING SHOT AND CARTRIDGE WADS:		
9306.2	-Shotgun cartridges and parts thereof; air gun pellets:		
9306.21.00	--Cartridges	5%	0
9306.29.00	--Other	0%	0
9306.30.00	-Other cartridges and parts thereof	5%	0
9306.90.00	-Other	0%	0
9307.00.00	SWORDS, CUTLASSES, BAYONETS, LANCES AND SIMILAR ARMS AND PARTS THEREOF AND SCABBARDS AND SHEATHS THEREFOR	0%	0
94	FURNITURE; BEDDING, MATTRESSES, MATTRESS SUPPORTS, CUSHIONS AND SIMILAR STUFFED FURNISHINGS; LAMPS AND LIGHTING FITTING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ILLUMINATED SIGNS, ILLUMINATED NAME-PLATES AND THE LIKE; PREFABRICATED BUILDINGS		
9401	SEATS (OTHER THAN THOSE OF 9402), WHETHER OR NOT CONVERTIBLE INTO BEDS, AND PARTS THEREOF:		
9401.10.00	-Seats of a kind used for aircraft	0%	0
9401.20.00	-Seats of a kind used for motor	5%	3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vehicles		
9401.30.00	-Swivel seats with variable height adjustment	5%	0
9401.40.00	-Seats other than garden seats or camping equipment, convertible into beds	5%	0
9401.5	-Seats of cane, osier, bamboo or similar materials:		
9401.51.00	--Of bamboo or rattan	5%	0
9401.59.00	--Other	5%	0
9401.6	-Other seats, with wooden frames:		
9401.61.00	--Upholstered	5%	0
9401.69.00	--Other	5%	0
9401.7	-Other seats, with metal frames:		
9401.71.00	--Upholstered	5%	0
9401.79.00	--Other	5%	0
9401.80.00	-Other seats	5%	0
9401.90	-Parts:		
9401.90.10	---Of seats of a kind used for aircraft	0%	0
9401.90.20	---Of seats of a kind used for motor vehicles	5%	5
9401.90.90	---Other	5%	0
9402	MEDICAL, SURGICAL, DENTAL OR VETERINARY FURNITURE (FOR EXAMPLE, OPERATING TABLES, EXAMINATION TABLES, HOSPITAL BEDS WITH MECHANICAL FITTINGS, DENTISTS' CHAIRS); BARBERS' CHAIRS AND SIMILAR CHAIRS, HAVING ROTATING AS WELL AS BOTH RECLINING AND ELEVATING MOVEMENTS; PARTS OF THE FOREGOING ARTICLES:		
9402.10.00	-Dentists', barbers' or similar chairs and parts thereof	0%	0
9402.90.00	-Other	5%	0
9403	OTHER FURNITURE AND PARTS THEREOF:		
9403.10.00	-Metal furniture of a kind used in offices	5%	0
9403.20.00	-Other metal furniture	5%	0
9403.30.00	-Wooden furniture of a kind used in offices	5%	0
9403.40.00	-Wooden furniture of a kind used in the kitchen	5%	0
9403.50.00	-Wooden furniture of a kind used in the bedroom	5%	0
9403.60.00	-Other wooden furniture	5%	0
9403.70.00	-Furniture of plastics	5%	0
9403.8	-Furniture of other materials, including cane, osier, bamboo or similar materials:		
9403.81.00	--Of bamboo or rattan	5%	0
9403.89.00	--Other	5%	0
9403.90.00	-Parts	5%	0
9404	MATTRESS SUPPORTS; ARTICLES OF BEDDING AND SIMILAR FURNISHING (FOR EXAMPLE, MATTRESSES, QUILTS, EIDERDOWNS, CUSHIONS, POUFFES AND PILLOWS) FITTED WITH SPRINGS OR STUFFED OR INTERNALLY FITTED WITH ANY MATERIAL OR OF CELLULAR RUBBER OR PLASTICS, WHETHER OR NOT COVERED:		
9404.10.00	-Mattress supports	0%	0
9404.2	-Mattresses:		
9404.21.00	--Of cellular rubber or plastics, whether or not covered	0%	0
9404.29.00	--Of other materials	0%	0
9404.30.00	-Sleeping bags	5%	0
9404.90.00	-Other	5%	0
9405	LAMPS AND LIGHTING FITTINGS INCLUDING SEARCHLIGHTS AND SPOTLIGHTS AND PARTS THEREOF,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ILLUMINATED SIGNS, ILLUMINATED NAME-PLATES AND THE LIKE, HAVING A PERMANENTLY FIXED LIGHT SOURCE, AND PARTS THEREOF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9405.10.00	-Chandeliers and other electric ceiling or wall lighting fittings, excluding those of a kind used for lighting public open spaces or thoroughfares	5%	0
9405.20.00	-Electric table, desk, bedside or floor-standing lamps	5%	0
9405.30.00	-Lighting sets of a kind used for Christmas trees	5%	0
9405.40.00	-Other electric lamps and lighting fittings	5%	0
9405.50	-Non-electrical lamps and lighting fittings:		
9405.50.10	---Candlesticks of glass	0%	0
9405.50.90	---Other	5%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9405.60.00	-Illuminated signs, illuminated name-plates and the like	5%	0
9405.9	-Parts:		
9405.91.00	--Of glass	5%	0
9405.92.00	--Of plastics	5%	0
9405.99.00	--Other	5%	0
9406.00.00	PREFABRICATED BUILDINGS	5%	0
95	TOYS, GAMES AND SPORTS REQUISITE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9503	TRICYCLES, SCOOTERS, PEDAL CARS AND SIMILAR WHEELED TOYS; DOLLS' CARRIAGES; DOLLS; OTHER TOYS; REDUCED-SIZE ("SCALE") MODELS AND SIMILAR RECREATIONAL MODELS, WORKING OR NOT; PUZZLES OF ALL KINDS:		
9503.00.10	---Wheeled toys designed to be ridden by children (for example, tricycles, scooters and pedal cars) and similar wheeled toys; dolls' carriages	5%	0
9503.00.20	---Dolls representing only human beings, including parts and accessories for those dolls	5%	0
9503.00.30	---Toys representing animals or non-human creatures	5%	0
9503.00.40	---Goods, as follows: (a) toy musical instruments and apparatus; (b) books	0%	0
9503.00.50	---Puzzles, other than books	5%	0
9503.00.60	---Goods, as follows: (a) electric trains, including tracks, signals and other accessories therefor; (b) reduced-size ("scale") model assembly kits, whether or not working models	0%	0
9503.00.70	---Other goods, as follows: (a) construction sets and constructional toys; (b) toys put up in sets or outfits	5%	0
9503.00.80	---Other toys and models, incorporating a motor	0%	0
9503.00.9	---Other:		
9503.00.91	----Of metal	5%	0
9503.00.99	----Other	5%	0
9504	VIDEO GAME CONSOLES AND MACHINES, ARTICLES FOR FUNFAIR, TABLE OR PARLOUR GAMES, INCLUDING PINTABLES, BILLIARDS, SPECIAL TABLES FOR CASINO GAMES AND AUTOMATIC BOWLING ALLEY EQUIPMENT:		
9504.20.00	-Articles and accessories for billiards of all kinds	5%	0
9504.30.00	-Other games, operated by coins, banknotes, bank cards, tokens or by any other means of payment, other than automatic bowling alley equipment	5%	0
9504.40.00	-Playing cards	5%	0
9504.50	-Video game consoles and machines, other than those of 9504.30.00:		
9504.50.10	---Video games of a kind used with a television receiver	0%	0
9504.50.90	---Other	5%	0
9504.90	-Other:		
9504.90.10	---Books	0%	0
9504.90.90	---Other	5%	0
9505	FESTIVE, CARNIVAL OR OTHER ENTERTAINMENT ARTICLES, INCLUDING CONJURING TRICKS AND NOVELTY JOKES:		
9505.10.00	-Articles for Christmas festivities	5%	0
9505.90.00	-Other	5%	0
9506	ARTICLES AND EQUIPMENT FOR GENERAL PHYSICAL EXERCISE, GYMNASTICS, ATHLETICS, OTHER SPORTS (INCLUDING TABLE-TENNIS) OR OUTDOOR GAME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SWIMMING POOLS AND PADDLING POOLS:		
9506.1	-Snow-skis and other snow-ski equipment:		
9506.11.00	--Skis	0%	0
9506.12.00	--Ski-fastenings (ski-bindings)	0%	0
9506.19.00	--Other	5%	0
9506.2	-Water-skis, surf-boards, sailboards and other water-sport equipment:		
9506.21.00	--Sailboards	5%	0
9506.29.00	--Other	5%	0
9506.3	-Golf clubs and other golf equipment:		
9506.31.00	--Clubs, complete	5%	0
9506.32.00	--Balls	5%	0
9506.39.00	--Other	5%	0
9506.40.00	-Articles and equipment for table-tennis	5%	0
9506.5	-Tennis, badminton or similar rackets, whether or not strung:		
9506.51.00	--Lawn-tennis rackets, whether or not strung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9506.59.00	--Other	0%	0
9506.6	-Balls, other than golf balls and table-tennis balls:		
9506.61.00	--Lawn-tennis balls	0%	0
9506.62.00	--Inflatable	5%	0
9506.69.00	--Other	5%	0
9506.70.00	-Ice skates and roller skates, including skating boots with skates attached	5%	0
9506.9	-Other:		
9506.91.00	--Articles and equipment for general physical exercise, gymnastics or athletics	5%	0
9506.99	--Other:		
9506.99.10	---Children's playground equipment	5%	0
9506.99.90	---Other	5%	0
9507	FISHING RODS, FISH-HOOKS AND OTHER LINE FISHING TACKLE; FISH LANDING NETS, BUTTERFLY NETS AND SIMILAR NETS; DECOY "BIRDS" (OTHER THAN THOSE OF 9208 OR 9705.00.00) AND SIMILAR HUNTING OR SHOOTING REQUISITES:		
9507.10.00	-Fishing rods	5%	0
9507.20.00	-Fish-hooks, whether or not snelled	0%	0
9507.30.00	-Fishing reels	5%	0
9507.90.00	-Other	5%	0
9508	ROUNDABOUTS, SWINGS, SHOOTING GALLERIES AND OTHER FAIRGROUND AMUSEMENTS; TRAVELLING CIRCUSES AND TRAVELLING MENAGERIES; TRAVELLING THEATRES:		
9508.10.00	-Travelling circuses and travelling menageries	5%	0
9508.90.00	-Other	5%	0
96	MISCELLANEOUS MANUFACTURED ARTICLES		
9601	WORKED IVORY, BONE, TORTOISE-SHELL, HORN, ANTLERS, CORAL, MOTHER-OF-PEARL AND OTHER ANIMAL CARVING MATERIAL, AND ARTICLES OF THESE MATERIALS (INCLUDING ARTICLES OBTAINED BY MOULDING):		
9601.10.00	-Worked ivory and articles of ivory	0%	0
9601.90.00	-Other	5%	0
9602	WORKED VEGETABLE OR MINERAL CARVING MATERIAL AND ARTICLES OF THESE MATERIALS; MOULDED OR CARVED ARTICLES OF WAX, OF STEARIN, OF NATURAL GUMS OR NATURAL RESINS OR OF MODELLING PASTES, AND OTHER MOULDED OR CARVED ARTICL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WORKED UNHARDENED GELATIN (EXCEPT GELATIN OF 3503) AND ARTICLES OF UNHARDENED GELATIN:		
9602.00.10	---Empty gelatin capsules	5%	0
9602.00.90	---Other	5%	0
9603	BROOMS, BRUSHES (INCLUDING BRUSHES CONSTITUTING PARTS OF MACHINES, APPLIANCES OR VEHICLES), HAND-OPERATED MECHANICAL FLOOR SWEEPERS, NOT MOTORISED, MOPS AND FEATHER DUSTERS; PREPARED KNOTS AND TUFTS FOR BROOM OR BRUSH MAKING; PAINT PADS AND ROLLERS; SQUEEGEES (OTHER THAN ROLLER SQUEEGEES):		
9603.10.00	-Brooms and brushes, consisting of twigs or other vegetable materials bound together, with or without handles	5%	0
9603.2	-Tooth brushes, shaving brushes, hair brushes, nail brushes, eyelash brushes and other toilet brushes for use on the person, including such brushes constituting parts of appliances:		
9603.21.00	--Tooth brushes, including dental-plate brushes	5%	0
9603.29.00	--Other	5%	0
9603.30.00	-Artists' brushes, writing brushes and similar brushes for the application of cosmetics	5%	0
9603.40.00	-Paint, distemper, varnish or similar brushes (other than brushes of 9603.30.00); paint pads and rollers	5%	0
9603.50.00	-Other brushes constituting parts of machines, appliances or vehicles	5%	0
9603.90.00	-Other	5%	0
9604.00.00	HAND SIEVES AND HAND RIDDLES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9605.00.00	TRAVEL SETS FOR PERSONAL TOILET, SEWING OR SHOE OR CLOTHES CLEANING	0%	0
9606	BUTTONS, PRESS-FASTENERS, SNAP-FASTENERS AND PRESS-STUDS, BUTTON MOULDS AND OTHER PARTS OF THESE ARTICLES; BUTTON BLANKS:		
9606.10.00	-Press-fasteners, snap-fasteners and press-studs and parts therefor	5%	0
9606.2	-Buttons:		
9606.21.00	--Of plastics, not covered with textile material	5%	0
9606.22.00	--Of base metal, not covered with textile material	0%	0
9606.29.00	--Other	5%	0
9606.30.00	-Button moulds and other parts of buttons; button blanks	0%	0
9607	SLIDE FASTENERS AND PARTS THEREOF:		
9607.1	-Slide fasteners:		
9607.11.00	--Fitted with chain scoops of base metal	5%	0
9607.19.00	--Other	5%	0
9607.20.00	-Parts	5%	0
9608	BALL POINT PENS; FELT TIPPED AND OTHER POROUS-TIPPED PENS AND MARKERS; FOUNTAIN PENS, STYLOGRAPH PENS AND OTHER PENS; DUPLICATING STYLOS; PROPELLING OR SLIDING PENCILS; PEN-HOLDERS, PENCIL-HOLDERS AND SIMILAR HOLDERS; PARTS (INCLUDING CAPS AND CLIPS) OF THE FOREGOING ARTICLES, OTHER THAN THOSE OF 9609:		
9608.10.00	-Ball point pens	5%	0
9608.20.00	-Felt tipped and other porous-tipped pens and markers	5%	0
9608.30	-Fountain pens, stylograph pens and other pens:		
9608.30.10	---Indian ink drawing pens	0%	0
9608.30.90	---Other	5%	0
9608.40.00	-Propelling or sliding pencils	5%	0
9608.50.00	-Sets of articles from two or more of the foregoing subheadings	0%	0
9608.60.00	-Refills for ball point pens, comprising the ball point and ink-reservoir	5%	0
9608.9	-Other:		
9608.91.00	--Pen nibs and nib points	0%	0
9608.99.00	--Other	5%	0
9609	PENCILS (OTHER THAN PENCILS OF 9608), CRAYONS, PENCIL LEADS, PASTELS, DRAWING CHARCOALS, WRITING OR DRAWING CHALKS AND TAILORS' CHALKS:		
9609.10.00	-Pencils and crayons, with leads encased in a rigid sheath	5%	0
9609.20.00	-Pencil leads, black or coloured	0%	0
9609.90.00	-Other	0%	0
9610.00.00	SLATES AND BOARDS, WITH WRITING OR DRAWING SURFACES, WHETHER OR NOT FRAMED	5%	0
9611.00.00	DATE, SEALING OR NUMBERING STAMPS, AND THE LIKE (INCLUDING DEVICES FOR PRINTING OR EMBOSSING LABELS), DESIGNED FOR OPERATING IN THE HAND; HAND-OPERATED COMPOSING STICKS, AND HAND PRINTING SETS INCORPORATING SUCH COMPOSING STICKS	0%	0
9612	TYPEWRITER OR SIMILAR RIBBONS, INKED OR OTHERWISE PREPARED FOR GIVING IMPRESSIONS, WHETHER OR NOT ON SPOOLS OR IN CARTRIDGES; INK-PADS, WHETHER OR NOT INKED, WITH OR WITHOUT BOXES:		
9612.10.00	-Ribbons	5%	0
9612.20.00	-Ink-pads	5%	0
9613	CIGARETTE LIGHTERS AND OTHER LIGHTERS, WHETHER OR NOT MECHANICAL OR ELECTRICAL, AND PARTS THEREOF OTHER THAN FLINTS AND WICKS:		
9613.10.00	-Pocket lighters, gas fuelled, non-refillable	0%	0
9613.20.00	-Pocket lighters, gas fuelled, refillable	0%	0
9613.80	-Other lighters:		
9613.80.10	---Table lighters	0%	0
9613.80.90	---Other	5%	5
9613.90.00	-Parts	0%	0

HS code (HS2012)	Description	MFN base rate 2010	Staging Category
9614.00.00	SMOKING PIPES (INCLUDING PIPE BOWLS) AND CIGAR OR CIGARETTE HOLDERS, AND PARTS THEREOF	0%	0
9615	COMBS, HAIR-SLIDES AND THE LIKE; HAIRPINS, CURLING PINS, CURLING GRIPS, HAIR-CURLERS AND THE LIKE, OTHER THAN THOSE OF 8516, AND PARTS THEREOF:		
9615.1	-Combs, hair-slides and the like:		
9615.11.00	--Of hard rubber or plastics	5%	0
9615.19.00	--Other	0%	0
9615.90.00	-Other	5%	0
9616	SCENT SPRAYS AND SIMILAR TOILET SPRAYS, AND MOUNTS AND HEADS THEREFOR; POWDER-PUFFS AND PADS FOR THE APPLICATION OF COSMETICS OR TOILET PREPARATIONS:		
9616.10.00	-Scent sprays and similar toilet sprays, and mounts and heads therefor	0%	0
9616.20.00	-Powder-puffs and pads for the application of cosmetics or toilet preparations	0%	0
9617.00.00	VACUUM FLASKS AND OTHER VACUUM VESSELS, COMPLETE WITH CASES; PARTS THEREOF OTHER THAN GLASS INNERS	0%	0
9618.00.00	TAILORS' DUMMIES AND OTHER LAY FIGURES; AUTOMATA AND OTHER ANIMATED DISPLAYS USED FOR SHOP WINDOW DRESSING	0%	0
9619	SANITARY TOWELS (PADS) AND TAMPONS, NAPKINS AND NAPKIN LINERS FOR BABIES AND SIMILAR ARTICLES, OF ANY MATERIAL:		
9619.00.10	---Goods, of paper pulp, paper, cellulose wadding or webs of cellulose fibres or of textile wadding, as follows: (a) incontinence pads, whether or not having an adhesive strip; (b) pants or napkins for adults	5%	0
9619.00.2	---Goods, NSA, of paper pulp, paper, cellulose wadding or webs of cellulose fibres or of textile wadding:		
9619.00.21	----Tampons	0%	0
9619.00.29	----Other	5%	0
9619.00.30	---Sanitary articles, NSA, being women's or girls' briefs or panties or men's or boys' underpants or briefs	10%	5
9619.00.4	---Garments, NSA:		
9619.00.41	----For babies	10%	5
9619.00.49	----Other	10%	5
9619.00.50	---Clothing accessories	0%	0
9619.00.60	---Sanitary articles of plastics, NSA	5%	0
9619.00.90	---Other textile articles	5%	0
97	WORKS OF ART, COLLECTORS' PIECES AND ANTIQUES		
9701	PAINTINGS, DRAWINGS AND PASTELS, EXECUTED ENTIRELY BY HAND, OTHER THAN DRAWINGS OF 4906.00.00 AND OTHER THAN HAND-PAINTED OR HAND-DECORATED MANUFACTURED ARTICLES; COLLAGES AND SIMILAR DECORATIVE PLAQUES:		
9701.10.00	-Paintings, drawings and pastels	0%	0
9701.90.00	-Other	0%	0
9702.00.00	ORIGINAL ENGRAVINGS, PRINTS AND LITHOGRAPHS	0%	0
9703.00.00	ORIGINAL SCULPTURES AND STATUARY, IN ANY MATERIAL	0%	0
9704.00.00	POSTAGE OR REVENUE STAMPS, STAMP-POSTMARKS, FIRST-DAY COVERS, POSTAL STATIONERY (STAMPED PAPER), AND THE LIKE, USED OR UNUSED, OTHER THAN THOSE OF 4907	0%	0
9705.00.00	COLLECTIONS AND COLLECTORS' PIECES OF ZOOLOGICAL, BOTANICAL, MINERALOGICAL, ANATOMICAL, HISTORICAL, ARCHAEOLOGICAL , PALAEONTOLOGICAL, ETHNOGRAPHIC OR NUMISMATIC INTEREST	0%	0
9706.00.00	ANTIQUES OF AN AGE EXCEEDING ONE HUNDRED YEARS	0%	0

CHAPTER 3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Section A: Rules of Origin

ARTICLE 3.1: ORIGINATING GOODS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Chapter, a good shall be regarded as originating in a Party where:

(a) the good is wholly obtain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3.2;

(b) the good is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exclusively from originating materials;

(c) the good satisfies all applicable requirements of Annex 3-A, as a result of processes perform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or

(d) the good otherwise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in accordance with this Chapter.

ARTICLE 3.2: WHOLLY OBTAINED GOODS

For the purposes of Article 3.1(a), the following goods shall be considered to be wholly obtain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 mineral good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taken or extracted from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 vegetable goods[2] grown and harvested, picked or gather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c) live animals born and rais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d) goods obtained from live animals born and rais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e) goods obtained from hunting, trapping, gathering, capturing, aquaculture or fishing conducted within the land territory, internal waters and the outer limit of the territorial sea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f) fish, shellfish and other marine life taken from the sea, seabed, ocean floor or subsoil outside the territorial seas of the Parties by a vessel registered or recorded with a Party and entitled to fly its flag;

(g) goods produced on board a factory ship from the fish, shellfish or other marine lif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f), provided that such factory ship is registered or recorded with a Party and entitled to fly its flag;

(h) goods, other than fish, shellfish and other marine life, taken or extracted from the seabed, ocean floor or subsoil outside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y a Party or a person of a Party, provided that the Party or person of the Party has rights to exploit such seabed, ocean floor or subsoil;

(i) goods taken from outer space, provided that they are obtained by a Party or a person of a Party and not processed in the territory of a non-Party;

(j) waste and scrap derived from:

  (i) production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or

  (ii) used goods collec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provided that such goods are fit only for the recovery of raw materials;

(k) goods collected from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which can no longer perform their original purpose and are fit only for the recovery of raw materials; and

(l) goods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exclusively from goods referred to in this Article or from their derivatives, at any stage of production.

ARTICLE 3.3: REGIONAL VALUE CONTENT

1. Where Annex 3-A specifies a regional value content requirement, the regional value content shall b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one of the following methods:

(a) build-down method

$$RVC = \frac{AV - VNM}{AV} \times 100$$

(b) build-up method

$$RVC = \frac{VOM}{AV} \times 100$$

where,

RVC is the regional value content, expressed as a percentage;

AV is the adjusted value of the good and shall be:

(a) the FOB value of the good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inclusive of the cost of transport and insurance to the port or site of final shipment abroad; or

(b) if there is no FOB value of the good or it is unknown and cannot be ascertained, the valu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mutatis mutandis*.

VNM is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including materials of undetermined origin)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as determined in Article 3.4; and

[2]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vegetable goods" include plants, fungi, algae, and products thereof.

VOM is the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as determined in Article 3.4.

2. All costs considered for the calculation of regional value content shall be recorded and maintained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applicable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where the good is produced.

3. All values for the purposes of calculating regional value content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For this purpose,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domestic transactions.

ARTICLE 3.4: VALUE OF MATERIALS

1. Subject to paragraph 2,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referred to in Article 3.3 shall be:

(a) for a material imported directly by the producer of a good, the CIF value at the time of importation of the material; or

(b) for a material acquired with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where the good is produced, the earliest ascertainabl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2.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the following, where includ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may be deducted from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a) the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 in the territory of a Party;

(b) the costs of freight, insurance, packing, and all other costs incurred in transporting the material within a Party's territory or between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to the location of the producer;

(c) duties, taxes, and customs brokerage fees on the material pai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other than duties and taxes that are waived, refunded, refundable, or otherwise recoverable, including credit against duty or tax paid or payable; and

(d) the cost of processing incurr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in the production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

3. Subject to paragraph 4, the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referred to in Article 3.3 shall be:

(a) for a material imported directly by the producer of a good, the CIF value at the time of importation of the material;

(b) for a material acquired with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where the good is produced, the value of the material; or

(c) for a material that is self-produced, the sum of all costs incurred in the production of the material, including general expenses, andan amount for profit equivalent to the profit added in the normal course of trade.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3, the following, where not includ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may be added to the value of the originating materials:

(a) the costs of freight, insurance, packing, and all other costs incurred in transporting the material within a Party's territory or between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to the location of the producer; and

(b) duties, taxes, and customs brokerage fees on the material pai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other than duties and taxes that are waived, refunded, refundable, or otherwise recoverable, including credit against duty or tax paid or payable.

5. For greater certainty, when an originating good is used in the subsequent production of another good, no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contained in the originating good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subsequently produced good.

6. For greater certainty, when a non-originating good is used in the subsequent production of another good, an account shall be taken only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contained in the non-originating good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subsequently produced good.

ARTICLE 3.5: ACCUMULATION

1. Originating goods of a Party, incorporated into a goo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2. A good is originating where the good is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provided that the good satisfies the requirements in Article 3.1 and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in this Chapter.

ARTICLE 3.6: DE MINIMIS

1. A good that does not satisfy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requirement pursuant to Annex 3-A is nonetheless originating if the value of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that have been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and do not undergo the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does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adjusted value of the good, provided that the value of such non-originating materials shall be included in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for any applicable regional value content requirement and that the good meets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in this Chapter.

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goods classified in Chapters 1 through 14 of the Harmonized System unless the non-originating material is provided for in a different subheading than the good for which origin is being determined under this Article.

3. Neither paragraph 1 or 2 shall apply to goods classified under Harmonized System codes 0301 through 0303; 0305 through 0308; 0701 through 0710.10; 0713 through 0714; 0801 through 0810; and 0813.10 through 0813.40.

4. A good classified in Chapters 50 through 63 of the Harmonized System,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be an originating good if the total weight of all non-originating fibres or yarn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component that determines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he good, that do not undergo the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does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weight of the good.

ARTICLE 3.7: FUNGIBLE GOODS AND MATERIALS

1. An importer claiming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for a good may claim that a fungible good or material is originating where the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has:

(a) physically segregated each fungible good or material; or

(b) used any inventory management method, such as averaging, last-in-first-out (LIFO) or first-in-first-out (FIFO), recognised in the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of the Party in which the production is performed or otherwise accepted by the Party in which the production is performed.

2. The inventory management method selec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for a particular fungible good or material shall continue to be used for that good or material throughout the fiscal year of the person that selected the inventory management method.

ARTICLE 3.8: ACCESSORIES, SPARE PARTS AND TOOLS

The origin of the accessories, spare parts or tools presented and classified with a good and delivered with the good at the time of importation:

(a) shall be disregarded if the good is subject to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requirement; and

(b) shall be taken into account as originating or non-originating materials, as the case may be, in calculating the regional value content of the good, if the good is subject to a regional value content requirement,

provided that:

(c) the accessories, spare parts or tools are not invoiced separately from the good and are included in the price of the good, regardless of whether they appear specified or separately identified in the invoice itself; and

(d) the quantities and value of the accessories, spare parts or tools are customary for the good.

ARTICLE 3.9: PACKAGING MATERIALS AND CONTAINERS FOR RETAIL SALE

1. Packaging materials and containers in which a good is packaged for retail sale shall, if classified with the good, be disregarded in determining whether all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undergo the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set out in Annex 3-A.

2. If a good is subject to a regional value content requirement, the value of packaging materials and containers described in paragraph 1 shall be taken into account as originating or non-originating materials, as the case may be, in calculating the regional value content of the good.

ARTICLE 3.10: PACKING MATERIALS AND CONTAINERS FOR TRANSPORTATION AND SHIPMENT

1. Packing materials and containers for transportation and shipment shall not be taken into account when determining whether a good is originating.

2.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packing materials and containers for transportation and shipment" means the goods used to protect a good during its transportation and does not include the packaging materials and containers in which the good is packaged for retail sale.

ARTICLE 3.11: INDIRECT MATERIALS

1. In determining whether a good is originating, indirect materials shall be treated as originating.

2.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indirect materials" means articles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which are not physically incorporated into it, nor form part of it, including:

(a) fuel and energy;

(b) tools, dies and moulds;

(c) spare parts and materials used in the maintenance of equipment and buildings;

(d) lubricants, greases, compounding materials and other materials used in production or used to operate equipment and buildings;

(e) gloves, glasses, footwear, clothing, safety equipment and supplies;

(f) equipment, devices and supplies used for testing or inspecting the good;

(g) catalysts and solvents; and

(h) any other goods that are not incorporated into the good but whose use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can reasonably be demonstrated to be a part of that production.

ARTICLE 3.12: NON-QUALIFYING OPERATION

1. Notwithstanding other provisions of this Chapter, a good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merely by reason of having undergon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operations or processes:

(a) preserving operations to ensure that the products remain in good condition during transport and storage;

(b) changes of packaging, breaking-up and assembly of packages;

(c) washing, cleaning, or removal of dust, oxide, oil, paint or other coverings;

(d) sharpening, simple grinding or crushing or simple cutting;

(e) simple placing in bottles, cans, flasks, bags, cases or boxes, fixing on cards or boards and all other simple packaging operations;

(f) affixing or printing marks, labels, logos and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products or their packaging;

(g) disassembly; or

(h) mere reclassification of goods without any physical change.

2. All operations and processes carried out in the territory of a Party on a good shall be considered together when determining whether the operations and processes undergone by that good fall within the scope of paragraph 1.

ARTICLE 3.13: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

Notwithstanding Article 3.1, the Parties agree that certain goods shall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even if they have undergone working or processing outside Korea, on materials exported from Korea and subsequently re-imported there, provided that the working or processing is done in the areas designated by the Parties pursuant to Annex 3-B.

ARTICLE 3.14: DIRECT TRANSPORT

1. An originating good shall retain its originating status a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provided that it is directly transported to the importing Party without passing through the territory of a non-Party.

2. An originating good that is transported through the territory of a non-Party shall not retain its originating status a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if it:

(a) has undergone any subsequent production or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storing, repacking, relabelling[3], splitting up of loads for transport reasons or any other operation necessary to preserve it in good condition or to transport the good to the territory of a Party; or

(b) does not remain under the customs control in the territory of a non-Party.

Section B: Origin Procedures

ARTICLE 3.15: CERTIFICATE OF ORIGIN

1. A claim that a good should be treated as originating and accepted as eligible for a preferential tariff shall be supported by a Certificate of Origin.

2. The Certificate of Origin shall be completed by the exporter or the producer and shall:

(a) specify that the goods described therein are originating;

(b) be made in respect of one or more goods and may include a variety of goods;

(c) be in a printed format or such other medium including electronic format; and

(d) be completed in English and contain the data elements set out with instructions in Annex 3-C. A model format for a Certificate of Origin is provided in Annex 3-D.

3. Where an exporter in the territory of a Party is not the producer of the good, the exporter may complete and sign a Certificate of Origin on the basis of:

(a) its knowledge that the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or

(b) a written declaration or statement, such as a Certificate of Origin, that the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provided by the producer.

4.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to require a producer who is not the exporter of the good to provide a Certificate of Origin, or written declaration or statement that the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5. A Certificate of Origin shall be applicable to:

(a) a single importation of one or more goods into a Party's territory; or

(b) multiple importations of the goods described therein that occur within the period of validity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6. A Certificate of Origin shall remain valid for at least two years, or for such longer period specified by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importing Party, after the date on which the Certificate of Origin was signed.

7. For any originating good that is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 Party on or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accept a Certificate of Origin that has been completed and signed prior to that date.

ARTICLE 3.16: AUTHORISED BODIES

1. Further to Article 3.15, for Australia, a Certificate of Origin may be issued by an authorised body following a written application submitted by an exporter or producer.

2. Australia shall provide that its authorised bodies carry out proper examination of each application for a Certificate of Origin to ensure that:

(a) the goods described therein are originating; and

(b) the data to be contained in the Certificate of Origin corresponds to that in supporting documentary evidence submitted.

3. Australia shall provide that its authorised bodies retain copies of Certificates of Origin and supporting documentary evidence for five years after the date of issue. Such documentation may be maintained in any medium that allows for prompt retrieval,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igital, optical, magnetic or written form.

4. Australia shall provide that an authorised body that has reason to believe that a Certificate of Origin, which it has issued, contains information that is not correct, shall promptly notify in writing the person to whom the Certificate of Origin was issued.

[3]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relabelling" means the affixing of labels necessary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importing Party; "repacking" means a packing operation necessary to transport the good to the territory of the importing Party.

5. Australia shall notify the names, addresses, specimens of the impressions of the official seals of its authorised bodies and other details that the Parties may agree to Korea. Any subsequent change shall be promptly notified.

ARTICLE 3.17: CLAIM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1.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Chapter, each Party shall grant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o a good imported into its territory from the other Party, provided that:

(a) the importer requests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at the time of importation;

(b) the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c) the importer has the Certificate of Origin in its possession at the time the customs import declaration is made, if required by the laws or regulations of the importing Party; and

(d) the importer provides, on request of the importing Party's customs administration,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and such other documentation relating to the importation of the goo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importing Party.

2. An importer should promptly make a corrected customs import declaration in a manner required by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the importing Party and pay any duties owing where the importer has reason to believe that a Certificate of Origin on which a claim was based contains information that is not correct.

ARTICLE 3.18: POST-IMPORTATION CLAIM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where a good would have qualified as an originating good when it was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that Party, the importer of the good may, within a period of at least one year, or for such longer period specified by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importing Party, after the date on which the good was imported, apply for a refund of any excess duties paid as the result of the good not having been accorded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on presentation to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the importing Party:

(a) a Certificate of Origin and, where appropriate, other evidence that the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and

(b) such other documentation in relation to the importation as the customs administration may require to satisfactorily evidence the tariff preference claimed.

ARTICLE 3.19: WAIVER OF CERTIFICATE OF ORIGIN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Certificate of Origin shall not be required for:

(a) an importation of a good whose customs value does not exceed 1,000 US dollars or its equivalent amount for Korea or 1,000 Australian dollars for Australia, or such higher amount as each Party may establish; or

(b) an importation of a good for which the importing Party has waived the requirement for a Certificate of Origin,

provided that the importation does not form part of a series of importations that may reasonably be considered to have been undertaken or arranged for the purpose of avoiding the certification requirements of Articles 3.15 and 3.17.

ARTICLE 3.20: DISCREPANCIES AND VARIATIONS

1. Where the origin of the good is not in doubt, minor transcription errors or discrepancies in documentation shall not *ipso facto* invalidate the Certificate of Origin, if it is duly established that it does correspond to the goods submitted.

2. Variations in the format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from the model format set out in Annex 3-D shall not invalidate the Certificate of Origin, provided that the Certificate of Origin contains the data elements set out in Annex 3-C.

ARTICLE 3.21: OBLIGATIONS REGARDING EXPORTATIONS

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n exporter or a producer that has completed and signed a Certificate of Origin, shall, on request, provide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and such other documents to its customs administration, if required by the Party's laws and regulations.

2.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n exporter or producer that has completed and signed, or applied for, a Certificate of Origin, and that has reason to believe that the Certificate of Origin contains information that is not correct, shall promptly notify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of Origin was given by the exporter or producer of any change that c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3. Each Party shall, to the extent permitted by its laws and regulations, maintain penalties for issuing false Certificates of Origin or documentation related to the origin of a good submitted to a customs administration of the importing or exporting Party.

ARTICLE 3.22: RECORD KEEPING REQUIREMENTS

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an exporter or a producer that completes and signs, or applies for a Certificate of Origin shall maintain, for five year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Certificate of Origin was signed, all records necessary to demonstrate that the good for which the producer or exporter provided the Certificate of Origin was an originating good; and

(b) an importer claiming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maintain, for five years after the date of importation of the good, such documentation, including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as the Party may require relating to the importation of the good.

2.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n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may choose to maintain the records specified in paragraph 1 in any medium that allows for prompt retrieval,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igital, electronic, optical, magnetic or written form.

ARTICLE 3.23: ORIGIN VERIFICATION

1.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imported into a Party from the other Party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the importing Party may conduct a verification action by means of:

(a) written requests for information from the importer;

(b) where the Certificate of Origin was issued by an authorised body, requests to that authorised body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c) written requests for information from the exporter or producer of the exporting Party;

(d) requests that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the exporting Party assist in verifying the origin of the good; or

(e) verification visits to the premises of the exporter or the producer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to observe the facilities and the production processes of the good and to review the records referring to origin, including accounting records.

2.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1(a), 1(b) and 1(c), the customs administration shall allow the importer, exporter, producer or authorised body a period of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written request to respond. During this period the importer, exporter, producer or authorised body may request, in writing, an extension not exceeding 30 days.

3.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nd Article 3.24, all the information requested by the importing Party and responded to by the exporting Party shall be communicated in English.

4.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the importing Party shall complete any action under paragraph 1 to verify eligibility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within the period specified in the laws, regulations or administrative procedures of the importing Party. Upon the completion of the verification action, the customs administration shall provide written advice to the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of its decision as well as the legal basis and findings of fact on which the decision was made. Where a verification visit was undertaken, the customs administration shall also provide advice of the decision to the exporting Party.

ARTICLE 3.24: VERIFICATION VISIT

1. Prior to conducting a verification visit under Article 3.23.1(e),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the importing Party shall:

(a) make a written request to the exporter or producer to conduct a verification visit of their premises; and

(b) obtain the written consent of the exporter or producer whose premises are to be visited.

2. An exporter or producer should provide its written consent to a proposed verification visit within 30 days from the receipt of no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a).

3. The written request referred to in paragraph 1(a) shall include:

(a) the identity of the customs administration issuing the request;

(b) the name of the exporter of the good in the exporting Party to whom the request is addressed;

(c) the date the written request is made;

(d) the proposed date and place of the visit;

(e) the objective and scope of the proposed visit, including specific reference to the good that is the subject of the verification referred to in the Certificate of Origin; and

(f) the names and titles of the officials of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the importing Party who will participate in the visit.

4.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the importing Party shall notify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the exporting Party when it requests a verification visit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5. Officials of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the exporting Party may participate in the verification visit as observers.

ARTICLE 3.25: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1. The importing Party may deny a claim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or recover unpaid duties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where:

(a) the good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b) the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of the good fails or has failed to comply with any of the relevant requirements for obtaining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or to maintain records or document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2;

(c) the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fails to provide information that the Party reques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3.2 demonstrating that the good is an originating good; or

(d) after receipt of a written notification for a verification visit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4.1, the exporter or producer fails to provide its written cons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4.2 or to provide access to records, production processes or facilities referred to in Article 3.23.1(e) demonstrating that the good is an originating good.

2. The importing Party may suspend or deny,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the application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o a good that is the subject of an origin verification action under Article 3.23 for the duration of that action, or any part thereof.

3. When the importing Party determines that a good is not eligible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he right of suspension or denial shall extend to any subsequent import of goods that are the same in all respects relevant to the particular rule of origin, until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those goods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RTICLE 3.26: NON-PARTY INVOICES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the importing Party shall not reject a Certificate of Origin only for the reason that the invoice was issued in the territory of a non-Party.

ARTICLE 3.27: CONFIDENTIALITY

For greater certainty, Article 4.11 (Confidentiality) shall apply to this Chapter.

ARTICLE 3.28: PENALTIES

Each Party shall maintain measures imposing criminal, civil or administrative penalties for violations of its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is Chapter.

ARTICLE 3.29: APPEAL PROCEDURES

The rights of review and appeal in matters relating to the determination of origin under this Chapter shall be gran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8 (Appeal Procedures), to an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of a good.

ARTICLE 3.30: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adjusted value means the value of a good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1;

aquaculture means the farming of aquatic organisms, including fish, molluscs, crustaceans, other aquatic invertebrates and aquatic plants, from seedstock such as eggs, fry, fingerlings and larvae, by intervention in the rearing or growth processes to enhance production, such as regular stocking, feeding, or protection from predators;

CIF value means the value of a good at the time of importation, inclusive of freight, insurance, packing, and all other costs incurred in transporting the good to the importation port;

exporter means a person locat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from where a good is exported by that person;

FOB means the free-on-board value of a good, inclusive of the cost of transport and insurance to the port or site of final shipment abroad;

fungible goods or materials means goods or materials that are identical or interchangeable as a result of being of the same kind and commercial quality, possessing essentially the same technic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means recognised consensus or substantial authoritative support given in the territory of a Party with respect to the recording of revenues, expenses, costs, assets and liabilities,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the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may encompass broad guidelines for general application, as well as detailed standards, practices and procedures;

good means any merchandise, product, article or material;

material means a good that is used or consumed in the production of another good, and physically incorporated into or classified with that good;

non-originating good or **non-originating material** means a good or material that does not qualify as originating under this Chapter;

producer means a person who engages in the production of a goo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production means any kind of working or processing, including growing, mining, harvesting, fishing, breeding, raising, trapping, hunting, manufacturing, assembling or disassembling a good; and

value means the value of a good or material for the purposes of calculating customs duties or for the purposes of applying this Chapter.

ANNEX 3-A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Headnotes to the Schedule

1. The specific rule, or specific set of rules, that applies to a particular heading (4-digit code) or subheading (6-digit code) is set out immediately adjacent to the heading or subheading.

2. When a heading or subheading is subject to alternative specific rules of origin, the rule will be considered to be met if a good satisfies one of the alternatives.

3. Where a specific rule of origin is defined using the criterion of a 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each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shall be required to undergo the applicable 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A requirement of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shall apply only to non-originating materials.

4. Where a specific rule of origin is defined using the criterion of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and the rule is written to exclude tariff provisions at the level of a chapter, heading or subheading of the Harmonized System, each Party shall construe the rule of origin to require that materials classified in those excluded provisions be originating for the good to qualify as originating.

5. Chapter notes within this Schedule shall apply to all headings or subheadings within the indicated chapter or group of chapters unless there exists a specific exclusion.

6. Each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undergoes an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specified in this Annex.

7. For the purposes of this Annex:

subheading means the first six digits in the tariff classification number under the Harmonized System;

heading means the first four digits in the tariff classification number under the Harmonized System; and

chapter means the first two digits in the tariff classification number under the Harmonized System.

8. For the purposes of column 3 of this Annex:

CC means that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have undergone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at the 2-digit level;

CTH means that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have undergone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at the 4-digit level;

CTSH means that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have undergone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at the 6-digit level;

WO means that the good must be wholly obtain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3.2;

RVC (40) means that the good must have a regional value content of not less than 40 per cent as calculated under Article 3.3; and

RVC (30/40) means that the good must have a regional value content of either not less than 30 per cent using the build-up method or not less than 40 per cent using the build-down method, as calculated under Article 3.3.

ANNEX 3-B
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

1. Recognising the Republic of Korea's constitutional mandate and security interests, and both Parties' commitment to promoting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importance of intra-Korean economic cooperation toward that global goal, a 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 i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4 (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2. The Committee shall be comprised of officials of the Parties. The Committee shall meet within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at least twice a year thereafter, or at any time as mutually agreed.

3. The Committee shall review the condi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dentify geographic areas[4] that may be designated as outward processing zones. The Committee shall also establish a maximum threshold for the value of the total input of the originating final good that may be added within the geographic area of the outward processing zone.

[4] For greater certainty,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located in North Korea shall be identified by the Committee as one of the geographic areas that may be designated as outward processing zones.

ANNEX 3-C
DATA ELEMENTS FOR A CERTIFICATE OF ORIGIN

1. Issuing number;
2. Exporter, including contact details;
3. Blanket period for multiple shipments;
4. Producer, including contact details (optional);
5. Importer, including contact details (optional);
6. Description of good(s);
7. Harmonized System code (six digits);
8. Preference criterion;
9. Observations (optional);
10. Declaration; and
11. Name, signature, company or authorised body and contact details of person completing the Certificate of Origin; and date of issue.

Instructions for completing the Certificate of Origin

For the purposes of obtaining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a Certificate of Origin must be completed legibly and in full by the exporter or producer or, in the case of Australia by an authorised body, and be in the possession of the importer at the time the declaration is made. Please print or type. If more space is needed, please use additional pages.

Field 1: Provide a unique number for the Certificate.

Field 2: State the full legal name and contact details (including address, telephone number and email) of the exporter.

Field 3: Complete this field if the Certificate covers multiple shipments of the goods described in Field 6 that are to be imported into Korea or Australia during a specified period. "FROM" is the date upon which the Certificate becomes applicable to the goods covered by the blanket Certificate (it may be earlier than the date this Certificate is signed). "TO" is the date upon which the blanket period expires. The importation of a good for which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is claimed based on this Certificate must occur between these dates. Dates should be specified in the format DD/MM/YYYY.

Field 4: State the full legal name and contact details (including address, telephone number and email) of the producer. This is an optional field.

Field 5: State the full legal name and contact details (including address, telephone number and email) of the importer. This is an optional field.

Field 6: Provide a full description of each good. The description should contain sufficient detail to relate it to the invoice description and to the Harmonized System (HS) description of the good. If the Certificate covers a single shipment of a good, it should list the quantity and unit of measurement of each good, including the series number, if possible, as well as the invoice number as shown on the commercial invoice. If not known, indicate another unique reference number, such as the shipping order number, purchase order number, or any other number that can be used to identify the goods.

Field 7: For each good described in Field 6, identify the Harmonized System code to six digits.

Field 8: For each good described in Field 6, state which criterion (WO, PE, PSR or Other) is applicable. The rules of origin are contained in this Chapter and Annex 3-A.

NOTE: In order to be entitled to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each good must meet at least one of the criteria below.

Preference criteria

WO — The good is wholly obtain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PE — The good is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exclusively from originating materials.

PSR — The good satisfies all applicable requirements of Annex 3-A, as a result of processes perform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Other — The good otherwise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under this Chapter.

Field 9: This field may be used when there is an observation relating to this Certificate, such as, when the good or goods described in Field 6 have been subject to an advance ruling or when the invoice is issued in the territory of a non-Party. This is an optional field.

Field 10: The declaration must contain and certify the following: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 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Field 11: This field must be completed, signed and dated by the exporter or, when the Certificate is completed by the producer for use by the exporter, by the producer. In the case of Australia, the Certificate may be issued by an authorised body following a written application submitted by the exporter or producer, in which case this field must be completed, signed and dated by the authorised body and bear the official stamp of that authorised body. The date must be the date the Certificate was completed and signed.

ANNEX 3-D
MODEL FORMAT

KORE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Please Print or Type　　1. Issuing number:

2. Exporter- name and contact details:	3. Blanket period for multiple shipments: From: (DD/MM/YYYY) To: (DD/MM/YYYY)	
4. Producer- name and contact details (optional field):	5. Importer - name and contact details (optional field):	
6.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invoice number or other unique reference number where appropriate):	7. Harmonized System code (six digits):	8. Preference criterion:
9. Observations (optional field):		
10. Declaration: I certify that: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 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11.Signature:	Company or Authorised Body:	
Name:	Title:	
Date:	Contact details:	

Schedule of Product Specific Rul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SECTION I LIVE ANIMALS; ANIMAL PRODUCTS (Chapters 1 – 5)	
01	CHAPTER 1 LIVE ANIMALS	
0101	Live horses, asses, mules and hinnies.	
0101.2	Horses	
0101.21	Pure-bred breeding animals	WO
0101.29	Other	WO
0101.30	Asses	WO
0101.90	Other	WO
0102	Live bovine animals.	
0102.2	Cattle	
0102.21	Pure-bred breeding animals	WO
0102.29	Other	WO
0102.3	Buffalo	
0102.31	Pure-bred breeding animals	WO
0102.39	Other	WO
0102.90	Other	WO
0103	Live swine.	
0103.10	Pure-bred breeding animals	WO
0103.9	Other:	
0103.91	Weighing less than 50 kg	WO
0103.92	Weighing 50 kg or more	WO
0104	Live sheep and goats.	
0104.10	Sheep	WO
0104.20	Goats	WO
0105	Live poultry, that is to say, fowls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ducks, geese, turkeys and guinea fowls.	
0105.1	Weighing not more than 185g:	
0105.11	Fowls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WO
0105.12	Turkeys	WO
0105.13	Ducks	WO
0105.14	Geese	WO
0105.15	Guinea fowls	WO
0105.9	Other:	
0105.94	Fowls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WO
0105.99	Other	WO
0106	Other live animals.	
0106.1	Mammals:	
0106.11	Primates	WO
0106.12	Whales, dolphins and porpoises (mammals of the order Cetacea); manatees and dugongs (mammals of the order Sirenia); seals, sea lions and walruses (mammals of the suborder Pinnipedia)	WO
0106.13	Camels and other camelids *(Camelidae)*	WO
0106.14	Rabbits and hares	WO
0106.19	Other	WO
0106.20	Reptiles (including snakes and turtles)	WO
0106.3	Birds:	
0106.31	Birds of prey	WO
0106.32	Psittaciformes (including parrots, parakeets, macaws and cockatoos)	WO
0106.33	Ostriches; emus (*Dromaius novaehollandiae*)	WO
0106.39	Other	WO
0106.4	Insects	
0106.41	Bees	WO
0106.49	Other	WO
0106.90	Other	WO
02	CHAPTER 2 MEAT AND EDIBLE MEAT OFFAL	
0201	Meat of bovine animals, fresh or chilled.	
0201.10	Carcasses and half-carcasses	CC except from chapter 1
0201.20	Other cuts with bone in	CC except from chapter 1
0201.30	Boneless	CC except from chapter 1
0202	Meat of bovine animals, frozen.	
0202.10	Carcasses and half-carcasses	CC except from chapter 1
0202.20	Other cuts with bone in	CC except from chapter 1
0202.30	Boneless	CC except from chapter 1
0203	Meat of swine, fresh, chilled or frozen.	
0203.1	Fresh or chilled:	
0203.11	Carcasses and half-carcasses	CC except from chapter 1
0203.12	Hams, shoulders and cuts thereof, with bone in	CC except from chapter 1
0203.19	Other	CC except from chapter 1
0203.2	Frozen:	
0203.21	Carcasses and half-carcasses	CC except from chapter 1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0203.22	Hams, shoulders and cuts thereof, with bone in	CC except from chapter 1
0203.29	Other	CC except from chapter 1
0204	Meat of sheep or goats, fresh, chilled or frozen.	
0204.10	Carcasses and half-carcasses of lamb, fresh or chilled	CC except from chapter 1
0204.2	Other meat of sheep, fresh or chilled:	
0204.21	Carcasses and half-carcasses	CC except from chapter 1
0204.22	Other cuts with bone in	CC except from chapter 1
0204.23	Boneless	CC except from chapter 1
0204.30	Carcasses and half-carcasses of lamb, frozen	CC except from chapter 1
0204.4	Other meat of sheep, frozen:	
0204.41	Carcasses and half-carcasses	CC except from chapter 1
0204.42	Other cuts with bone in	CC except from chapter 1
0204.43	Boneless	CC except from chapter 1
0204.50	Meat of goats	CC except from chapter 1
0205.00	Meat of horses, asses, mules or hinnies, fresh, chilled or frozen.	CC except from chapter 1
0206	Edible offal of bovine animals, swine, sheep, goats, horses, asses, mules or hinnies, fresh, chilled or frozen.	
0206.10	Of bovine animals, fresh or chilled	CC except from chapter 1
0206.2	Of bovine animals, frozen:	
0206.21	Tongues	CC except from chapter 1
0206.22	Livers	CC except from chapter 1
0206.29	Other	CC except from chapter 1
0206.30	Of swine, fresh or chilled	CC except from chapter 1
0206.4	Of swine, frozen:	
0206.41	Livers	CC except from chapter 1
0206.49	Other	CC except from chapter 1
0206.80	Other, fresh or chilled	CC except from chapter 1
0206.90	Other, frozen	CC except from chapter 1
0207	Meat and edible offal, of the poultry of heading 01.05, fresh, chilled or frozen.	
0207.1	Of fowls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0207.11	Not cut in pieces, fresh or chilled	CC except from chapter 1
0207.12	Not cut in pieces, frozen	CC except from chapter 1
0207.13	Cuts and offal, fresh or chilled	CC except from chapter 1
0207.14	Cuts and offal, frozen	CC except from chapter 1
0207.2	Of turkeys:	
0207.24	Not cut in pieces, fresh or chilled	CC except from chapter 1
0207.25	Not cut in pieces, frozen	CC except from chapter 1
0207.26	Cuts and offal, fresh or chilled	CC except from chapter 1
0207.27	Cuts and offal, frozen	CC except from chapter 1
0207.4	Of ducks:	
0207.41	Not cut in pieces, fresh or chilled	CC except from chapter 1
0207.42	Not cut in pieces, frozen	CC except from chapter 1
0207.43	Fatty livers, fresh or chilled	CC except from chapter 1
0207.44	Other, fresh or chilled	CC except from chapter 1
0207.45	Other, frozen	CC except from chapter 1
0207.5	Of geese:	
0207.51	Not cut in pieces, fresh or chilled	CC except from chapter 1
0207.52	Not cut in pieces, frozen	CC except from chapter 1
0207.53	Fatty livers, fresh or chilled	CC except from chapter 1
0207.54	Other, fresh or chilled	CC except from chapter 1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0207.55	Other, frozen	CC except from chapter 1
0207.60	Of guinea fowls	CC except from chapter 1
0208	Other meat and edible meat offal, fresh, chilled or frozen.	
0208.10	Of rabbits or hares	CC except from chapter 1
0208.30	Of primates	CC except from chapter 1
0208.40	Of whales, dolphins and porpoises (mammals of the order Cetacea); of manatees and dugongs (mammals of the order Sirenia); of seals, sea lions and walruses (mammals of the suborder Pinnipedia)	CC except from chapter 1
0208.50	Of reptiles (including snakes and turtles)	CC except from chapter 1
0208.60	Of camels and other camelids *(Camelidae)*	CC except from chapter 1
0208.90	Other	CC except from chapter 1
0209	Pig fat, free of lean meat, and poultry fat, not rendered or otherwise extracted, fresh, chilled, frozen, salted, in brine, dried or smoked.	
0209.10	Of pigs	CC except from chapter 1
0209.90	Other	CC except from chapter 1
0210	Meat and edible meat offal, salted, in brine, dried or smoked; edible flours and meals of meat or meat offal.	
0210.1	Meat of swine:	
0210.11	Hams, shoulders and cuts thereof, with bone in	CC except from chapter 1
0210.12	Bellies (streaky) and cuts thereof	CC except from chapter 1
0210.19	Other	CC except from chapter 1
0210.20	Meat of bovine animals	CC except from chapter 1
0210.9	Other, including edible flours and meals of meat or meat offal:	
0210.91	Of primates	CC except from chapter 1
0210.92	Of whales, dolphins and porpoises (mammals of the order Cetacea); of manatees and dugongs (mammals of the order Sirenia); of seals, sea lions and walruses (mammals of the suborder Pinnipedia)	CC except from chapter 1
0210.93	Of reptiles (including snakes and turtles)	CC except from chapter 1
0210.99	Other	CC except from chapter 1
03	CHAPTER 3 FISH AND CRUSTACEANS, MOLLUSCS AND OTHER AQUATIC INVERTEBRATES	
0301	Live fish.	
0301.1	Ornamental fish:	
0301.11	Freshwater	WO
0301.19	Other	WO
0301.9	Other live fish:	
0301.91	Trout (*Salmo trutta, Oncorhynchus mykiss, Oncorhynchus clarki, Oncorhynchus aguabonita, Oncorhynchus gilae, Oncorhynchus apache and Oncorhynchus chrysogaster*)	WO
0301.92	Eels (*Anguilla spp.*)	WO
0301.93	Carp (*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WO
0301.94	Atlantic and Pacific bluefin tunas (*Thunnus thynnus, Thunnus orientalis*)	WO
0301.95	Southern bluefin tunas (*Thunnus maccoyii*)	WO
0301.99	Other	WO
0302	Fish, fresh or chilled, excluding fish fillets and other fish meat of heading 03.04.	
0302.1	Salmonidae, excluding livers and roes:	
0302.11	Trout (*Salmo trutta, Oncorhynchus mykiss, Oncorhynchus clarki, Oncorhynchus aguabonita, Oncorhynchus gilae, Oncorhynchus apache and Oncorhynchus chrysogaster*)	WO
0302.13	Pacific salmon (*Oncorhynchus nerka, Oncorhynchus gorbuscha, Oncorhynchus keta, Oncorhynchus tschawytscha, Oncorhynchus kisutch, Oncorhynchus masou and Oncorhynchus rhodurus*)	WO
0302.14	Atlantic salmon (*Salmo salar*) and Danube salmon (*Hucho hucho*)	WO
0302.19	Other	WO
0302.2	Flat fish (*Pleuronectidae, Bothidae, Cynoglossidae, Soleidae, Scophthalmidae* and *Citharidae*), excluding livers and roes:	
0302.21	Halibut (*Reinhardtius hippoglossoides, Hippoglossus hippoglossus, Hippoglossus stenolepis*)	WO
0302.22	Plaice (*Pleuronectes platessa*)	WO
0302.23	Sole (*Solea spp.*)	WO
0302.24	Turbots (*Psetta maxima*)	WO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0302.29	Other	**WO**
0302.3	Tunas (of the genus *Thunnus*), skipjack or stripe-bellied bonito (*Euthynnus (Katsuwonus) pelamis*), excluding livers and roes:	
0302.31	Albacore or longfinned tunas (*Thunnus alalunga*)	**WO**
0302.32	Yellowfin tunas (*Thunnus albacares*)	**WO**
0302.33	Skipjack or stripe-bellied bonito	**WO**
0302.34	Bigeye tunas (*Thunnus obesus*)	**WO**
0302.35	Atlantic and Pacific bluefin tunas (*Thunnus thynnus, Thunnus orientalis*)	**WO**
0302.36	Southern bluefin tunas (*Thunnus maccoyii*)	**WO**
0302.39	Other	**WO**
0302.4	Herrings (*Clupea harengus, Clupea pallasii*), anchovies (*Engraulis spp.*), sardines (*Sardina pilchardus, Sardinops spp.*), sardinella (*Sardinella spp.*), brisling or sprats (*Sprattus sprattus*), mackerel (*Scomber scombrus, Scomber australasicus, Scomberjaponicus*), jack and horse mackerel (*Trachurus spp.*), cobia (*Rachycentron canadum*) and swordfish (*Xiphias gladius*), excluding livers and roes:	
0302.41	Herrings (*Clupea harengus, Clupea pallasii*)	**WO**
0302.42	Anchovies (*Engraulis spp.*)	**WO**
0302.43	Sardines (*Sardina pilchardus, Sardinops spp.*), sardinella (*Sardinella spp.*), brisling or sprats (*Sprattus sprattus*)	**WO**
0302.44	Mackerel (*Scomber scombrus, Scomber australasicus, Scomber japonicus*)	**WO**
0302.45	Jack and horse mackerel (*Trachurus spp.*)	**WO**
0302.46	Cobia (*Rachycentron canadum*)	**WO**
0302.47	Swordfish (*Xiphias gladius*)	**WO**
0302.5	Fish of the families *Bregmacerotidae, Euclichthyidae, Gadidae, Macrouridae, Melanonidae, Merlucciidae, Moridae* and *Muraenolepididae*, excluding livers and roes:	
0302.51	Cod (*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rocephalus*)	**WO**
0302.52	Haddock (*Melanogrammus aeglefinus*)	**WO**
0302.53	Coalfish (*Pollachius virens*)	**WO**
0302.54	Hake (*Merluccius spp., Urophycis spp.*)	**WO**
0302.55	Alaska Pollack (*Theraga chalcogramma*)	**WO**
0302.56	Blue whitings (*Micromesistius poutassou, Micromesistius australis*)	**WO**
0302.59	Other	**WO**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0302.7	Tilapias (*Oreochrimis spp.*), catfish (*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carp (*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eels (*Anguilla spp.*), Nile perch (*Lates niloticus*) and snakeheads (*Channa spp.*), excluding livers and roes:	
0302.71	Tilapias (*Oreochrimis spp.*),	**WO**
0302.72	Catfish (*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WO**
0302.73	Carp (*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WO**
0302.74	Eels (*Anguilla spp.*)	**WO**
0302.79	Other	**WO**
0302.8	Other fish, excluding livers and roes:	
0302.81	Dogfish and other sharks	**WO**
0302.82	Rays and skates (*Rajidae*)	**WO**
0302.83	Toothfish (*Dissostichus spp.*)	**WO**
0302.84	Seabass (*Dicentrarchus spp.*)	**WO**
0302.85	Seabream (*Sparidae*)	**WO**
0302.89	Other	**WO**
0302.90	Livers and roes	**WO**
0303	Fish, frozen, excluding fish fillets and other fish meat of heading 03.04.	
0303.1	Salmonidae, excluding livers and roes:	
0303.11	Sockeye salmon (red salmon) (*Oncorhynchus nerka*)	**WO**
0303.12	Other Pacific salmon (*Oncorhynchus gorbuscha, Oncorhynchus keta, Oncorhynchus tschawytscha, Oncorhynchus kisutch, Oncorhynchus masou and Oncorhynchus rhodurus*)	**WO**
0303.13	Atlantic salmon (*Salmo salar*) and Danube salmon (*Hucho hucho*)	**WO**
0303.14	Trout *(Salmo trutta, Oncorhynchus mykiss, Oncorhynchus clarki, Oncorhynchus aguabonita, Oncorhynchus gilae, Oncorhynchus apache and Oncorhynchus chrysogaster)*	**WO**
0303.19	Other	**WO**
0303.2	Tilapias (*Oreochromis spp.*), catfish (*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carp (*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eels (*Anguilla spp.*), Nile perch (*Lates niloticus*) and snakeheads (*Channa spp.*), excluding livers and roes:	
0303.23	Tilapias (*Oreochromis spp.*)	**WO**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0303.24	Catfish (*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WO**
0303.25	Carp (*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WO**
0303.26	Eels (*Anguilla spp.*)	**WO**
0303.29	Other	**WO**
0303.3	Flat fish *(Pleuronectidae, Bothidae, Cynoglossidae, Soleidae, Scophthalmidae and Citharidae)*, excluding livers and roes:	
0303.31	Halibut (*Reinhardtius hippoglossoides, Hippoglossus hippoglossus, Hippoglossus stenolepis*)	**WO**
0303.32	Plaice *(Pleuronectes platessa)*	**WO**
0303.33	Sole (*Solea spp.*)	**WO**
0303.34	Turbots (*Psetta maxima*)	**WO**
0303.39	Other	**WO**
0303.4	Tunas (of the genus *Thunnus*), skipjack or stripe-bellied bonito (*Euthynnus (Katsuwonus) pelamis*), excluding livers and roes:	
0303.41	Albacore or longfinned tunas (*Thunnus alalunga*)	**WO**
0303.42	Yellowfin tunas (*Thunnus albacares*)	**WO**
0303.43	Skipjack or stripe-bellied bonito	**WO**
0303.44	Bigeye tunas (*Thunnus obesus*)	**WO**
0303.45	Atlantic and Pacific bluefin tunas (*Thunnus thynnus, Thunnus orientalis*)	**WO**
0303.46	Southern bluefin tunas (*Thunnus maccoyii*)	**WO**
0303.49	Other	**WO**
0303.5	Herrings (*Clupea harengus, Clupea pallasii*), sardines (*Sardina pilchardus, Sardinops spp.*), sardinella (*Sardinella spp.*), brisling or sprats (*Sprattus sprattus*), mackerel (*Scomber scombrus, Scomber australasicus, Scomber japonicus*), jack and horse mackerel (*Trachurus spp.*), cobia (*Rachycentron canadum*) and swordfish (*Xiphias gladius*), excluding livers and roes:	
0303.51	Herrings (*Clupea harengus, Clupea pallasii*)	**WO**
0303.53	Sardines (*Sardina pilchardus, Sardinops spp.*), sardinella (*Sardinella spp.*), brisling or sprats (*Sprattus sprattus*)	**WO**
0303.54	Mackerel (*Scomber scombrus, Scomber australasicus, Scomber japonicus*)	**WO**
0303.55	Jack and horse mackerel (*Trachurus spp.*)	**WO**
0303.56	Cobia (*Rachycentron canadum*)	**WO**
0303.57	Swordfish (*Xiphias gladius*)	**WO**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0303.6	Fish of the families *Bregmacerotidae, Euclichthyidae, Gadidae, Macrouridae, Melanonidae, Merlucciidae, Moridae* and *Muraenolepididae*, excluding livers and roes:	
0303.63	Cod (*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rocephalus*)	**WO**
0303.64	Haddock (*Melanogrammus aeglefinus*)	**WO**
0303.65	Coalfish (*Pollachius virens*)	**WO**
0303.66	Hake (*Merluccius spp., Urophycis spp.*)	**WO**
0303.67	Alaska Pollack (*Theraga chalcogramma*)	**WO**
0303.68	Blue whitings (*Micromesistius poutassou, Micromesistius australis*)	**WO**
0303.69	Other	**WO**
0303.8	Other fish, excluding livers and roes:	
0303.81	Dogfish and other sharks	**WO**
0303.82	Rays and skates (*Rajidae*)	**WO**
0303.83	Toothfish (*Dissostichus spp.*)	**WO**
0303.84	Seabass (*Dicentrarchus spp.*)	**WO**
0303.89	Other	**WO**
0303.90	Livers and roes	**WO**
0304	Fish fillets and other fish meat (whether or not minced), fresh, chilled or frozen.	
0304.3	Fresh or chilled fillets of tilapias (*Oreochromis spp.*), catfish (*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carp (*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eels (*Anguilla spp.*), Nile perch (*Lates niloticus*) and snakeheads (*Channa spp.*):	
0304.31	Tilapias (*Oreochromis spp.*)	**CC**
0304.32	Catfish (*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CC**
0304.33	Nile Perch (*Lates niloticus*)	**CC**
0304.39	Other	**CC**
0304.4	Fresh or chilled fillets of other fish:	
0304.41	Pacific salmon (*Oncorhynchus nerka, Oncorhynchus gorbuscha, Oncorhynchus keta, Oncorhynchus tschawytscha, Oncorhynchus kisutch, Oncorhynchus masou* and *Oncorhynchus rhodurus*), Atlantic salmon (*Salmo salar*) and Danube salmon (*Hucho hucho*)	**CC**
0304.42	Trout (*Salmo trutta, Oncorhynchus mykiss, Oncorhynchus clarki, Oncorhynchus aguabonita, Oncorhynchus gilae, Oncorhynchus apache* and *Oncorhynchus chrysogaster*)	**CC**
0304.43	Flat fish (*Pleuronectidae, Bothidae, Cynoglossidae, Soleidae, Scophthalmidae* and *Citharidae*)	**CC**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0304.44	Fish of the families *Bregmacerotidae, Euclichthyidae, Gadidae, Macrouridae, Melanonidae, Merlucciidae, Moridae* and *Muraenolepididae*	CC
0304.45	Swordfish (*Xiphias gladius*)	CC
0304.46	Toothfish (*Dissostichus spp.*)	CC
0304.49	Other	CC
0304.5	Other, freshed or chilled:	
0304.51	Tilapias (*Oreochromis spp.*), catfish (*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carp (*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eels (*Anguilla spp.*), Nile perch (*Lates niloticus*) and snakeheads (*Channa spp.*)	CC
0304.52	Salmonidae	CC
0304.53	Fish of the families *Bregmacerotidae, Euclichthyidae, Gadidae, Macrouridae, Melanonidae, Merlucciidae, Moridae* and *Muraenolepididae*	CC
0304.54	Swordfish (*Xiphias gladius*)	CC
0304.55	Toothfish (*Dissostichus spp.*)	CC
0304.59	Other	CC
0304.6	Frozen fillets of tilapias (*Oreochromis spp.*), catfish (*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carp (*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eels (*Anguilla spp.*), Nile perch (*Lates niloticus*) and snakeheads (*Channa spp.*)	
0304.61	Tilapias (*Oreochromis spp.*)	CC
0304.62	Catfish (*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CC
0304.63	Nile Perch (*Lates niloticus*)	CC
0304.69	Other	CC
0304.7	Frozen fillets of fish of the families *Bregmacerotidae, Euclichthyidae, Gadidae, Macrouridae, Melanonidae, Merlucciidae, Moridae* and *Muraenolepididae*:	
0304.71	Cod (*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rocephalus*)	CC
0304.72	Haddock (*Melanogrammus aeglefinus*)	CC
0304.73	Coalfish (*Pollachius virens*)	CC
0304.74	Hake (*Merluccius spp., Urophycis spp.*)	CC
0304.75	Alaska Pollack (*Theraga chalcogramma*)	CC
0304.79	Other	CC
0304.8	Frozen fillets of other fish:	
0304.81	Pacific salmon (*Oncorhynchus nerka, Oncorhynchus gorbuscha, Oncorhynchus keta, Oncorhynchus tschawytscha, Oncorhynchus kisutch, Oncorhynchus masou and Oncorhynchus rhodurus*), Atlantic salmon (*Salmo salar*) and Danube salmon (*Hucho hucho*)	CC
0304.82	Trout (*Salmo trutta, Oncorhynchus mykiss, Oncorhynchus clarki, Oncorhynchus aguabonita, Oncorhynchus gilae, Oncorhynchus apache* and *Oncorhynchus chrysogaster*)	CC
0304.83	Flat fish (*Pleuronectidae, Bothidae, Cynoglossidae, Soleidae, Scophthalmidae* and *Citharidae*)	CC
0304.84	Swordfish (*Xiphias gladius*)	CC
0304.85	Toothfish (*Dissostichus spp.*)	CC
0304.86	Herrings (*Clupea harengus, Clupea pallasii*)	CC
0304.87	Tunas (of the genus *Thunnus*), skipjack or stripe-bellied bonito (*Euthynnus (Katsuwonus) pelamis*)	CC
0304.89	Other	CC
0304.9	Other, frozen:	
0304.91	Swordfish (*Xiphias gladius*)	CC
0304.92	Toothfish (*Dissostichus spp.*)	CC
0304.93	Tilapias (*Oreochromis spp.*), catfish (*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carp (*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eels (*Anguilla spp.*), Nile perch (*Lates niloticus*) and snakeheads (*Channa spp.*)	CC
0304.94	Alaska Pollack (*Theraga chalcogramma*)	CC
0304.95	Fish of the families *Bregmacerotidae, Euclichthyidae, Gadidae, Macrouridae, Melanonidae, Merlucciidae, Moridae and Muraenolepididae*, other than Alaska Pollack (*Therga chalcogramma*)	CC
0304.99	Other	CC
0305	Fish, dried, salted or in brine; smoked fish, whether or not cooked before or during the smoking process; flours, meals and pellets of fish, fit for human consumption.	
0305.10	Flours, meals and pellets of fish, fit for human consumption	CC
0305.20	Livers and roes of fish, dried, smoked, salted or in brine	CC
0305.3	Fish fillets, dried, salted or in brine, but not smoked: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0305.31	Tilapias (*Oreochromis spp.*), catfish (*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carp (*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eels (*Anguilla spp.*), Nile perch (*Lates niloticus*) and snakeheads (*Channa spp.*)	CC
0305.32	Fish of the families *Bregmacerotidae, Euclichthyidae, Gadidae, Macrouridae, Melanonidae, Merlucciidae, Moridae* and *Muraenolepididae*	CC
0305.39	Other	CC
0305.4	Smoked fish, including fillets, other than edible fish offal:	
0305.41	Pacific salmon (*Oncorhynchus nerka, Oncorhynchus gorbuscha, Oncorhynchus keta, Oncorhynchus tschawytscha, Oncorhynchus kisutch, Oncorhynchus masou* and *Oncorhynchus rhodurus*), Atlantic salmon (*Salmo salar*) and Danube salmon (*Hucho hucho*)	CC
0305.42	Herrings (*Clupea harengus, Clupea pallasii*)	CC
0305.43	Trout (*Salmo trutta, Oncorhynchus mykiss, Oncorhynchus clarki, Oncorhynchus aguabonita, Oncorhynchus gilae, Oncorhynchus apache* and *Oncorhynchus chrysogaster*)	CC
0305.44	Tilapias (*Oreochromis spp.*), catfish (*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carp (*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eels (*Anguilla spp.*), Nile perch (*Lates niloticus*) and snakeheads (*Channa spp.*)	CC
0305.49	Other	CC
0305.5	Dried fish, other than edible fish offal, whether or not salted but not smoked:	
0305.51	Cod (*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rocephalus*)	CC
0305.59	Other	CC
0305.6	Fish, salted but not dried or smoked and fish in brine, other than edible fish offal:	
0305.61	Herrings (*Clupea harengus, Clupea pallasii*)	CC
0305.62	Cod (*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rocephalus*)	CC
0305.63	Anchovies (*Engraulis spp.*)	CC
0305.64	Tilapias (*Oreochromis spp.*), catfish (*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carp (*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eels (*Anguilla spp.*), Nile perch (*Lates niloticus*) and snakeheads (*Channa spp.*)	CC
0305.69	Other	CC
0305.7	Fish fins, heads, tails, maws and other edible fish offal:	
0305.71	Shark fins	CC
0305.72	Fish heads, tails and maws	CC
0305.79	Other	CC
0306	Crustaceans, whether in shell or not, live, fresh, chilled, frozen, dried, salted or in brine; smoked crustaceans, whether in shell or not, whether or not cooked before or during the smoking process; crustaceans, in shell, cooked by steaming or by boiling in water, whether or not chilled, frozen, dried, salted or in brine; flours, meals and pellets of crustaceans, fit for human consumption.	
0306.1	Frozen:	
0306.11	Rock lobster and other sea crawfish (*Palinurus spp., Panulirus spp., Jasus spp.*)	WO
0306.12	Lobsters (*Homarus spp.*)	WO
0306.14	Crabs	WO
0306.15	Norway lobsters (*Nephrops norvegicus*)	WO
0306.16	Cold-water shrimps and prawns (*Pandalus spp., Crangon crangon*)	WO
0306.17	Other shrimps and prawns	WO
0306.19	Other, including flours, meals and pellets of crustaceans, fit for human consumption	CC
0306.2	Not frozen:	
0306.21	Rock lobster and other sea crawfish (*Palinurus spp., Panulirus spp., Jasus spp.*)	WO
0306.22	Lobsters (*Homarus spp.*)	WO
0306.24	Crabs	WO
0306.25	Norway lobsters (*Nephrops norvegicus*)	CC
0306.26	Cold-water shrimps and prawns (*Pandalus spp., Crangon crangon*)	WO
0306.27	Other shrimps and prawns	WO
0306.29	Other, including flours, meals and pellets of crustaceans, fit for human consumption	CC
0307	Molluscs, whether in shell or not, live, fresh, chilled, frozen, dried, salted or in brine; smoked molluscs, whether in shell or not, whether or not cooked before or during the smoking process; flours, meals and pellets of molluscs, fit for human consumption.	
0307.1	Oysters:	
0307.11	Live, fresh or chilled	WO
0307.19	Other	WO
0307.2	Scallops, including queen scallops, of the genera *Pecten, Chlamys* or *Placopecten*: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0307.21	Live, fresh or chilled	WO
0307.29	Other	WO
0307.3	Mussels (*Mytilus spp., Perna spp.*):	
0307.31	Live, fresh or chilled	WO
0307.39	Other	WO
0307.4	Cuttle fish (*Sepia officinalis, Rossia macrosoma, Sepiola spp.*) and squid (*Ommastrephes spp., Loligo spp., Nototodarus spp., Sepioteuthis spp.*):	
0307.41	Live, fresh or chilled	WO
0307.49	Other	WO
0307.5	Octopus (*Octopus spp.*):	
0307.51	Live, fresh or chilled	WO
0307.59	Other	WO
0307.60	Snails, other than sea snails	WO
0307.7	Clams, cockles and ark shells (families *Arcidae, Arcticidae, Cardiidae, Donacidae, Hiatellidae, Mactridae, Mesodesmatidae, Myidae, Semelidae, Solecurtidae, Solenidae, Tridacnidae* and *Veneridae*):	
0307.71	Live, fresh or chilled	WO
0307.79	Other	CC
0307.8	Abalone (*Haliotis spp.*)	
0307.81	Live, fresh or chilled	WO
0307.89	Other	CC
0307.9	Other, including flours, meals and pellets fit for human consumption:	
0307.91	Live, fresh or chilled	WO
0307.99	Other	CC
0308	Aquatic invertebrates other than crustaceans and molluscs, live, fresh, chilled, frozen, dried, salted or in brine; smoked aquatic invertebrates other than crustaceans and molluscs, whether or not cooked before or during the smoking process; flours, meals and pellets of aquatic invertebrates other than crustaceans and molluscs, fit for human consumption.	
0308.1	Sea cucumbers (*Stichopus japonicus, Holothurioidea*):	
0308.11	Live, fresh or chilled	WO
0308.19	Other	CC
0308.2	Sea urchins (*Strongylocentrotus spp., Paracentrotus lividus, Loxechinus albus, Echichinus esculentus*):	
0308.21	Live, fresh or chilled	WO
0308.29	Other	CC
0308.30	Jellyfish (*Rhopilema spp.*)	WO
0308.90	Other	WO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04	CHAPTER 4 DAIRY PRODUCE; BIRDS' EGGS; NATURAL HONEY; EDIBLE PRODUCTS OF ANIMAL ORIGIN,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0401	Milk and cream, not concentrated no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0401.10	Of a fat content, by weight, not exceeding 1 %	WO
0401.20	Of a fat content, by weight, exceeding 1 % but not exceeding 6 %	WO
0401.40	Of a fat content, by weight, exceeding 6 % but not exceeding 10 %	WO
0401.50	Of a fat content, by weight, exceeding 10 %	WO
0402	Milk and cream, concentrated o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0402.10	In powder, granules or other solid forms, of a fat content, by weight, not exceeding 1.5 %	CC except from subheading 1901.90
0402.2	In powder, granules or other solid forms, of a fat content, by weight, exceeding 1.5 %:	
0402.21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CC except from subheading 1901.90
0402.29	Other	CC except from subheading 1901.90
0402.9	Other:	
0402.91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CC except from subheading 1901.90
0402.99	Other	CC except from subheading 1901.90
0403	Buttermilk, curdled milk and cream, yogurt, kephir and other fermented or acidified milk and cream, whether or not concentrated o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or flavoured or containing added fruit, nuts or cocoa.	
0403.10	Yogurt	CC except from subheading 1901.90
0403.90	Other	CC except from subheading 1901.90
0404	Whey, whether or not concentrated o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products consisting of natural milk constituents,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0404.10	Whey and modified whey, whether or not concentrated o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CC except from subheading 1901.90
0404.90	Other	CC except from subheading 1901.90
0405	Butter and other fats and oils derived from milk; dairy spreads.	
0405.10	Butter	CC except from subheading 1901.90
0405.20	Dairy spreads	CC except from subheading 1901.90
0405.90	Other	CC except from subheading 1901.90
0406	Cheese and curd.	
0406.10	Fresh (unripened or uncured) cheese, including whey cheese, and curd	CC except from subheading 1901.90
0406.20	Grated or powdered cheese, of all kinds	CC except from subheading 1901.90
0406.30	Processed cheese, not grated or powdered	CC except from subheading 1901.90
0406.40	Blue-veined cheese and other cheese containing veins produced by *Penicillium roqueforti*	CC except from subheading 1901.90
0406.90	Other cheese	CC except from subheading 1901.90
0407	Birds' eggs, in shell, fresh, preserved or cooked.	
0407.1	Fertilised eggs for incubation:	
0407.11	Of fowls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WO
0407.19	Other	WO
0407.2	Other fresh eggs:	
0407.21	Of fowls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WO
0407.29	Other	WO
0407.90	Others	WO
0408	Birds' eggs, not in shell, and egg yolks, fresh, dried, cooked by steaming or by boiling in water, moulded, frozen or otherwise preserved,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0408.1	Egg yolks:	
0408.11	Dried	WO
0408.19	Other	WO
0408.9	Other:	
0408.91	Dried	WO
0408.99	Other	WO
0409.00	Natural honey.	CC except from subheading 1901.90
0410.00	Edible products of animal origin,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CC
05	CHAPTER 5 PRODUCTS OF ANIMAL ORIGIN,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0501.00	Human hair, unworked, whether or not washed or scoured; waste of human hair.	WO
0502	Pigs', hogs' or boars' bristles and hair; badger hair and other brush making hair; waste of such bristles or hair.	
0502.10	Pigs', hogs' or boars' bristles and hair and waste thereof	WO
0502.90	Other	WO
0504.00	Guts, bladders and stomachs of animals (other than fish), whole and pieces thereof, fresh, chilled, frozen, salted, in brine, dried or smoked.	CC except from chapters 1 and 2
0505	Skins and other parts of birds, with their feathers or down, feathers and parts of feathers (whether or not with trimmed edges) and down, not further worked than cleaned, disinfected or treated for preservation; powder and waste of feathers or parts of feathers.	
0505.10	Feathers of a kind used for stuffing; down	CC
0505.90	Other	CC
0506	Bones and horn-cores, unworked, defatted, simply prepared (but not cut to shape), treated with acid or degelatinised; powder and waste of these products.	
0506.10	Ossein and bones treated with acid	CC except from chapters 1 and 2
0506.90	Other	CC except from chapters 1 and 2
0507	Ivory, tortoise-shell, whalebone and whalebone hair, horns, antlers, hooves, nails, claws and beaks, unworked or simply prepared but not cut to shape; powder and waste of these products.	
0507.10	Ivory; ivory powder and waste	WO
0507.90	Other	WO
0508.00	Coral and similar materials, unworked or simply prepared but not otherwise worked; shells of molluscs, crustaceans or echinoderms and cuttle-bone, unworked or simply prepared but not cut to shape, powder and waste thereof.	WO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0510.00	Ambergris, castoreum, civet and musk; cantharides; bile, whether or not dried; glands and other animal products, used in the preparation of pharmaceutical products, fresh, chilled, frozen or otherwise provisionally preserved.	CC
0511	Animal product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dead animals of Chapter 1 or 3, unfit for human consumption.	
0511.10	Bovine semen	CC
0511.9	Other:	
0511.91	Products of fish or crustaceans, molluscs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s; dead animals of Chapter 3	CC
0511.99	Other	CC except from chapters 1 and 2
	SECTION II VEGETABLE PRODUCTS (Chapters 6 - 14)	
06	CHAPTER 6 LIVE TREES AND OTHER PLANTS; BULBS, ROOTS AND THE LIKE; CUT FLOWERS AND ORNAMENTAL FOLIAGE	
0601	Bulbs, tubers, tuberous roots, corms, crowns and rhizomes, dormant, in growth or in flower; chicory plants and roots other than roots of heading 1212.	
0601.10	Bulbs, tubers, tuberous roots, corms, crowns and rhizomes, dormant	WO
0601.20	Bulbs, tubers, tuberous roots, corms, crowns and rhizomes, in growth or in flower; chicory plants and roots	WO
0602	Other live plants (including their roots), cuttings and slips; mushroom spawn.	
0602.10	Unrooted cuttings and slips	WO
0602.20	Trees, shrubs and bushes, grafted or not, of kinds which bear edible fruit or nuts	WO
0602.30	Rhododendrons and azaleas, grafted or not	WO
0602.40	Roses, grafted or not	WO
0602.90	Other	WO
0603	Cut flowers and flower buds of a kind suitable for bouquets or for ornamental purposes, fresh, dried, dyed, bleached, impregnated or otherwise prepared.	
0603.1	Fresh:	
0603.11	Roses	WO
0603.12	Carnations	WO
0603.13	Orchids	WO
0603.14	Chrysanthemums	WO
0603.15	Lilies (*Lilium spp.*)	WO
0603.19	Other	WO
0603.90	Other	WO
0604	Foliage, branches and other parts of plants, without flowers or flower buds, and grasses, mosses and lichens, being goods of a kind suitable for bouquets or for ornamental purposes, fresh, dried, dyed, bleached, impregnated or otherwise prepared.	
0604.20	Fresh	WO
0604.90	Other	WO
07	CHAPTER 7 EDIBLE VEGETABLES AND CERTAIN ROOTS AND TUBERS	
0701	Potatoes, fresh or chilled.	
0701.10	For seed	WO
0701.90	Other	WO
0702.00	Tomatoes, fresh or chilled.	WO
0703	Onions, shallots, garlic, leeks and other alliaceous vegetables, fresh or chilled.	
0703.10	Onions and shallots	WO
0703.20	Garlic	WO
0703.90	Leeks and other alliaceous vegetables	WO
0704	Cabbages, cauliflowers, kohlrabi, kale and similar edible brassicas, fresh or chilled.	
0704.10	Cauliflowers and headed broccoli	WO
0704.20	Brussels sprouts	WO
0704.90	Other	WO
0705	Lettuce (*Lactuca sativa*) and chicory (*Cichorium spp.*) fresh or chilled.	
0705.1	Lettuce:	
0705.11	Cabbage lettuce (head lettuce)	WO
0705.19	Other	WO
0705.2	Chicory:	
0705.21	Witloof chicory (*Cichorium intybus var. foliosum*)	WO
0705.29	Other	WO
0706	Carrots, turnips, salad beetroot, salsify, celeriac, radishes and similar edible roots, fresh or chilled.	
0706.10	Carrots and turnips	WO
0706.90	Other	WO
0707.00	Cucumbers and gherkins, fresh or chilled.	WO
0708	Leguminous vegetables, shelled or unshelled, fresh or chilled.	
0708.10	Peas (*Pisum sativum*)	WO
0708.20	Beans (*Vigna spp., Phaseolus spp.*)	WO
0708.90	Other leguminous vegetables	WO
0709	Other vegetables, fresh or chilled.	
0709.20	Asparagus	WO
0709.30	Aubergines (egg-plants)	WO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0709.40	Celery other than celeriac	WO
0709.5	Mushrooms and truffles:	
0709.51	Mushrooms of the genus *Agaricus*	WO
0709.59	Other	WO
0709.60	Fruits of the genus Capsicum or of the genus *Pimenta*	WO
0709.70	Spinach, New Zealand spinach and orache spinach (garden spinach)	WO
0709.9	Other:	
0709.91	Globe artichokes	WO
0709.92	Olives	WO
0709.93	Pumpkins, squash and gourds (*Cucurbita spp.*)	WO
0709.99	Other	WO
0710	Vegetables (uncooked or cooked by steaming or boiling in water), frozen.	
0710.10	Potatoes	CC
0710.2	Leguminous vegetables, shelled or unshelled:	
0710.21	Peas (*Pisum sativum*)	CC
0710.22	Beans (*Vigna spp., Phaseolus spp.*)	CC
0710.29	Other	CC
0710.30	Spinach, New Zealand spinach and orache spinach (garden spinach)	CC
0710.40	Sweet corn	CC
0710.80	Other vegetables	CC
0710.90	Mixtures of vegetables	CC
0711	Vegetables provisionally preserved (for example, by sulphur dioxide gas, in brine, in sulphur water or in other preservative solutions), but unsuitable in that state for immediate consumption.	
0711.20	Olives	CC
0711.40	Cucumbers and gherkins	CC
0711.5	Mushrooms and truffles:	
0711.51	Mushrooms of the genus *Agaricus*	CC
0711.59	Other	CC
0711.90	Other vegetables; mixtures of vegetables	CC
0712	Dried vegetables, whole, cut, sliced, broken or in powder, but not further prepared.	
0712.20	Onions	CC
0712.3	Mushrooms, wood ears (*Auricularia spp.*), jelly fungi (*Tremella spp.*) and truffles:	
0712.31	Mushrooms of the genus *Agaricus*	CC
0712.32	Wood ears (*Auricularia spp.*)	CC
0712.33	Jelly fungi (*Tremella spp.*)	CC
0712.39	Other	CC
0712.90	Other vegetables; mixtures of vegetables	CC
0713	Dried leguminous vegetables, shelled, whether or not skinned or split.	
0713.10	Peas (*Pisum sativum*)	WO
0713.20	Chickpeas (*Garbanzos*)	WO
0713.3	Beans (*Vigna spp., Phaseolus spp.*):	
0713.31	Beans of the species *Vigna mungo(L.) Hepper* or *Vigna radiata(L.) Wilczek*	WO
0713.32	Samll red (Adzuki) beans (*Phaseolus* or *Vigna angularis*)	WO
0713.33	Kidney beans, including white pea beans (*Phaseolus vulgaris*)	WO
0713.34	Bambara beans (*Vigna subterranea* or *Voandzeia subterranea*)	WO
0713.35	Cow peas (*Vigna unguiculata*)	WO
0713.39	Other	WO
0713.40	Lentils	WO
0713.50	Broad beans (*Vicia faba var. major*) and horse beans (*Vicia faba var. equina, Vicia faba var. minor*)	WO
0713.60	Pigeon peas (*Cajanus cajan*)	WO
0713.90	Other	WO
0714	Manioc, arrowroot, salep, Jerusalem artichokes, sweet potatoes and similar roots and tubers with high starch or inulin content, fresh, chilled, frozen or dried, whether or not sliced or in the form of pellets; sago pith.	
0714.10	Manioc (cassava)	WO
0714.20	Sweet potatoes	WO
0714.30	Yams (*Dioscorea spp.*)	WO
0714.40	Taro (*Colocasia spp.*)	WO
0714.50	Yautia (*Xanthosoma spp.*)	WO
0714.90	Other	WO
08	CHAPTER 8 EDIBLE FRUIT AND NUTS; PEEL OF CITRUS FRUIT OR MELONS	
0801	Coconuts, Brazil nuts and cashew nuts, fresh or dried, whether or not shelled or peeled.	
0801.1	Coconuts:	
0801.11	Desiccated	WO
0801.12	In the inner shell (endocarp)	WO
0801.19	Other	WO
0801.2	Brazil nuts:	
0801.21	In shell	WO
0801.22	Shelled	WO
0801.3	Cashew nuts:	
0801.31	In shell	WO
0801.32	Shelled	WO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0802	Other nuts, fresh or dried, whether or not shelled or peeled.	
0802.1	Almonds:	
0802.11	In shell	**WO**
0802.12	Shelled	**WO**
0802.2	Hazelnuts or filberts (*Corylus spp.*):	
0802.21	In shell	**WO**
0802.22	Shelled	**WO**
0802.3	Walnuts:	
0802.31	In shell	**WO**
0802.32	Shelled	**WO**
0802.4	Chestnuts (*Castanea spp.*):	
0802.41	In shell	**WO**
0802.42	Shelled	**WO**
0802.5	Pistachios:	
0802.51	In shell	**WO**
0802.52	Shelled	**WO**
0802.6	Macadamia nuts:	
0802.61	In shell	**WO**
0802.62	Shelled	**WO**
0802.70	Kola nuts (*Cola spp.*)	**WO**
0802.80	Areca nuts	**WO**
0802.90	Other	**WO**
0803	Bananas, including plantains, fresh or dried.	
0803.10	Plantains	**WO**
0803.90	Other	**WO**
0804	Dates, figs, pineapples, avocados, guavas, mangoes and mangosteens, fresh or dried.	
0804.10	Dates	**WO**
0804.20	Figs	**WO**
0804.30	Pineapples	**WO**
0804.40	Avocados	**WO**
0804.50	Guavas, mangoes and mangosteens	**WO**
0805	Citrus fruit, fresh or dried.	
0805.10	Oranges	**WO**
0805.20	Mandarins (including tangerines and satsumas); clementines, wilkings and similar citrus hybrids	**WO**
0805.40	Grapefruit, including pomelos	**WO**
0805.50	Lemons (*Citrus limon, Citrus limonum*) and limes (*Citrus aurantifolia, Citrus latifolia*)	**WO**
0805.90	Other	**WO**
0806	Grapes, fresh or dried.	
0806.10	Fresh	**WO**
0806.20	Dried	**WO**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0807	Melons (including watermelons) and papaws (papayas), fresh.	
0807.1	Melons (including watermelons):	
0807.11	Watermelons	**WO**
0807.19	Other	**WO**
0807.20	Papaws (papayas)	**WO**
0808	Apples, pears and quinces, fresh.	
0808.10	Apples	**WO**
0808.30	Pears	**WO**
0808.40	Quinces	**WO**
0809	Apricots, cherries, peaches (including nectarines), plums and sloes, fresh.	
0809.10	Apricots	**WO**
0809.2	Cherries:	
0809.21	Sour cherries (*Prunus cerasus*)	**WO**
0809.29	Other	**WO**
0809.30	Peaches, including nectarines	**WO**
0809.40	Plums and sloes	**WO**
0810	Other fruit, fresh.	
0810.10	Strawberries	**WO**
0810.20	Raspberries, blackberries, mulberries and loganberries	**WO**
0810.30	Black, white or red currants and gooseberries	**WO**
0810.40	Cranberries, bilberries and other fruits of the genus *Vaccinium*	**WO**
0810.50	Kiwifruit	**WO**
0810.60	Durians	**WO**
0810.70	Persimmons	**WO**
0810.90	Other	**WO**
0811	Fruit and nuts, uncooked or cooked by steaming or boiling in water, frozen,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0811.10	Strawberries	**CC**
0811.20	Raspberries, blackberries, mulberries, loganberries, black, white or red currants and gooseberries	**CC**
0811.90	Other	**CC**
0812	Fruit and nuts, provisionally preserved (for example, by sulphur dioxide gas, in brine, in sulphur water or in other preservative solutions), but unsuitable in that state for immediate consumption.	
0812.10	Cherries	**CC**
0812.90	Other	**CC**
0813	Fruit, dried, other than that of headings 08.01 to 08.06; mixtures of nuts or dried fruits of this Chapter.	
0813.10	Apricots	**WO**
0813.20	Prunes	**WO**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0813.30	Apples	WO
0813.40	Other fruit	WO
0813.50	Mixtures of nuts or dried fruits of this Chapter	CC
0814.00	Peel of citrus fruit or melons (including watermelons), fresh, frozen, dried or provisionally preserved in brine, in sulphur water or in other preservative solutions.	CC
09	CHAPTER 9 COFFEE, TEA, MATÉ AND SPICES	
0901	Coffee, whether or not roasted or decaffeinated; coffee husks and skins; coffee substitutes containing coffee in any proportion.	
0901.1	Coffee, not roasted:	
0901.11	Not decaffeinated	WO
0901.12	Decaffeinated	CC
0901.2	Coffee roasted:	
0901.21	Not decaffeinated	CTSH
0901.22	Decaffeinated	CTSH
0901.90	Other	CC
0902	Tea, whether or not flavoured.	
0902.10	Green tea (not fermented) in immediate packings of a content not exceeding 3 kg	CC
0902.20	Other green tea (not fermented)	CC
0902.30	Black tea (fermented) and partly fermented tea, in immediate packings of a content not exceeding 3 kg	CC
0902.40	Other black tea (fermented) and other partly fermented tea	CC
0903.00	Maté.	CC
0904	Pepper of the genus *Piper*; dried or crushed or ground fruits of the genus *Capsicum* or of the genus *Pimenta*.	
0904.1	Pepper:	
0904.11	Neither crushed nor ground	CC
0904.12	Crushed or ground	CC
0904.2	Fruits of the genus *Capsicum* or of the genus *Pimenta:*	
0904.21	Dried, neither crushed nor ground	CC except from subheadings 0709.60 or 0710.80
0904.22	Crushed or ground	CC except from subheadings 0709.60 or 0710.80
0905	Vanilla.	
0905.10	Neither crushed nor ground	CC
0905.20	Crushed or ground	CC
0906	Cinnamon and cinnamon-tree flowers.	
0906.1	Neither crushed nor ground:	
0906.11	Cinnamon(*Cinnamomum zeylanicum Blume*)	CC
0906.19	Other	CC
0906.20	Crushed or ground	CC
0907	Cloves (whole fruit, cloves and stems).	
0907.10	Neither crushed nor ground	WO
0907.20	Crushed or ground	WO
0908	Nutmeg, mace and cardamoms.	
0908.1	Nutmeg:	
0908.11	Neither crushed nor ground	WO
0908.12	Crushed or ground	WO
0908.2	Mace:	
0908.21	Neither crushed nor ground	WO
0908.22	Crushed or ground	WO
0908.3	Cardamoms:	
0908.31	Neither crushed nor ground	WO
0908.32	Crushed or ground	WO
0909	Seeds of anise, badian, fennel, coriander, cumin or caraway; juniper berries.	
0909.2	Seeds of coriander:	
0909.21	Neither crushed nor ground	WO
0909.22	Crushed or ground	WO
0909.3	Seeds of cumin:	
0909.31	Neither crushed nor ground	WO
0909.32	Crushed or ground	WO
0909.6	Seeds of anise, badian, carraway or fennel; juniper berries:	
0909.61	Neither crushed nor ground	WO
0909.62	Crushed or ground	WO
0910	Ginger, saffron, turmeric (curcuma), thyme, bay leaves, curry and other spices.	
0910.1	Ginger:	
0910.11	Neither crushed nor ground	WO
0910.12	Crushed or ground	WO
0910.20	Saffron	WO
0910.30	Turmeric (curcuma)	WO
0910.9	Other spices:	
0910.91	Mixtures referred to in Note 1 (b) to this chapter	CC
0910.99	Other	CC
10	CHAPTER 10 CEREALS	
1001	Wheat and meslin:	
1001.1	Durum wheat:	
1001.11	Seed	WO
1001.19	Other	WO
1001.9	Other: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1001.91	Seed	WO
1001.99	Other	WO
1002	Rye.	
1002.10	Seed	WO
1002.90	Other	WO
1003	Barley.	
1003.10	Seed	WO
1003.90	Other	WO
1004	Oats.	
1004.10	Seed	WO
1004.90	Other	WO
1005	Maize (corn).	
1005.10	For seed	WO
1005.90	Other	WO
1006	Rice.	
1006.10	Rice in the husk (paddy or rough)	WO
1006.20	Husked (brown) rice	WO
1006.30	Semi-milled or wholly milled rice, whether or not polished or glazed	WO
1006.40	Broken rice	WO
1007	Grain sorghum.	
1007.10	Seed	WO
1007.90	Other	WO
1008	Buckwheat, millet and canary seeds; other cereals.	
1008.10	Buckwheat	WO
1008.2	Millet:	
1008.21	Seed	WO
1008.29	Other	WO
1008.30	Canary seeds	WO
1008.40	Fonio (*Digitaria spp.*)	WO
1008.50	Quinoa (*Chenopodium quinoa*)	WO
1008.60	Triticale	WO
1008.90	Other cereals	WO
11	CHAPTER 11 PRODUCTS OF THE MILLING INDUSTRY; MALT; STARCHES; INULIN; WHEAT GLUTEN	
1101.00	Wheat or meslin flour	CC except from chapter 10
1102	Cereal flours other than of wheat or meslin.	
1102.20	Maize (corn) flour	CC except from chapter 10
1102.90	Other	CC except from chapter 10
1103	Cereal groats, meal and pellets.	
1103.1	Groats and meal:	
1103.11	Of wheat	CC except from chapter 10
1103.13	Of maize (corn)	CC except from chapter 10
1103.19	Of other cereals	CC except from chapter 10
1103.20	Pellets	CC except from chapter 10
1104	Cereal grains otherwise worked (for example, hulled, rolled, flaked, pearled, sliced or kibbled), except rice of heading 10.06; germ of cereals, whole, rolled, flaked or ground.	
1104.1	Rolled or flaked grains:	
1104.12	Of oats	CC except from chapter 10
1104.19	Of other cereals	CC except from chapter 10
1104.2	Other worked grains (for example, hulled, pearled, sliced or kibbled):	
1104.22	Of oats	CC except from chapter 10
1104.23	Of maize (corn)	CC except from chapter 10
1104.29	Of other cereals	CC except from chapter 10
1104.30	Germ of cereals, whole, rolled, flaked or ground	CC except from chapter 10
1105	Flour, meal, powder, flakes, granules and pellets of potatoes.	
1105.10	Flour, meal and powder	CC except from chapter 7
1105.20	Flakes, granules and pellets	CC except from chapter 7
1106	Flour, meal and powder of the dried leguminous vegetables of heading 07.13, of sago or of roots or tubers of heading 07.14 or of the products of Chapter 8.	
1106.10	Of the dried leguminous vegetables of heading 07.13	CC except from chapters 7 and 8
1106.20	Of sago or of roots or tubers of heading 07.14	CC except from chapters 7 and 8
1106.30	Of the products of Chapter 8	CC except from chapters 7 and 8
1107	Malt, whether or not roasted.	
1107.10	Not roasted	CC except from chapter 1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1107.20	Roasted	CC except from chapter 10
1108	Starches; inulin.	
1108.1	Starches:	
1108.11	Wheat starch	CC except from chapters 7 and 10
1108.12	Maize (corn) starch	CC except from chapters 7 and 10
1108.13	Potato starch	CC except from chapters 7 and 10
1108.14	Manioc (cassava) starch	CC except from chapters 7 and 10
1108.19	Other starches	CC except from chapters 7 and 10
1108.20	Inulin	CC except from chapters 7 and 10
1109.00	Wheat gluten, whether or not dried.	CC except from chapters 7 and 10
12	CHAPTER 12 OIL SEEDS AND OLEAGINOUS FRUITS; MISCELLANEOUS GRAINS, SEEDS AND FRUIT; INDUSTRIAL OR MEDICINAL PLANTS; STRAW AND FODDER	
1201	Soya Beans, whether or not broken.	
1201.10	Seed	WO
1201.90	Other	WO
1202	Ground-nuts, not roasted or otherwise cooked, whether or not shelled or broken.	
1202.30	Seed	WO
1202.4	Other:	
1202.41	In shell	WO
1202.42	Shelled, whether or not broken	CC
1203.00	Copra.	WO
1204.00	Linseed, whether or not broken.	WO
1205	Rape or colza seeds, whether or not broken.	
1205.10	Low erucic acid rape or colza seeds	WO
1205.90	Other	WO
1206.00	Sunflower seeds, whether or not broken.	WO
1207	Other oil seeds and oleaginous fruits, whether or not broken.	
1207.10	Palm nuts and kernels	WO
1207.2	Cotton Seeds:	
1207.21	Seed	WO
1207.29	Other	WO
1207.30	Castor oil seeds	WO
1207.40	Sesamum seeds	WO
1207.50	Mustard seeds	WO
1207.60	Safflower (*Carthamus tinctorius*) seeds	WO
1207.70	Melon seeds	WO
1207.9	Other:	
1207.91	Poppy seeds	WO
1207.99	Other	WO
1208	Flours and meals of oil seeds or oleaginous fruit, other than those of mustard.	
1208.10	Of soya beans	CC
1208.90	Other	CC
1209	Seeds, fruit and spores, of a kind used for sowing.	
1209.10	Sugar beet seeds	WO
1209.2	Seeds of forage plants:	
1209.21	Lucerne (alfalfa) seeds	WO
1209.22	Clover (*Trifolium spp.*) seeds	WO
1209.23	Fescue seeds	WO
1209.24	Kentucky blue grass (*Poa pratensis* L.) seeds	WO
1209.25	Rye grass (*Lolium multiflorum Lam., Lolium perenne L.*) seeds	WO
1209.29	Other	WO
1209.30	Seeds of herbaceous plants cultivated principally for their flowers	WO
1209.9	Other:	
1209.91	Vegetable seeds	WO
1209.99	Other	WO
1210	Hop cones, fresh or dried, whether or not ground, powdered or in the form of pellets; lupulin.	
1210.10	Hop cones, neither ground nor powdered nor in the form of pellets	CC
1210.20	Hop cones, ground, powdered or in the form of pellets; lupulin	CC
1211	Plants and parts of plants (including seeds and fruits), of a kind used primarily in perfumery, in pharmacy or for insecticidal, fungicidal or similar purposes, fresh or dried, whether or not cut, crushed or powdered.	
1211.20	Ginseng roots	WO
1211.30	Coca leaf	WO
1211.40	Poppy straw	WO
1211.90	Other	WO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1212	Locust beans, seaweeds and other algae, sugar beet and sugar cane, fresh, chilled, frozen or dried, whether or not ground; fruit stones and kernels and other vegetable products (including unroasted chicory roots of the variety *Cichorium intybus sativum*) of a kind used primarily for human consumption,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1212.2	Seaweeds and other algae:	
1212.21	Fit for human consumption	WO
1212.29	Other	WO
1212.9	Other:	
1212.91	Sugar beet	WO
1212.92	Locust beans (carob)	WO
1212.93	Sugar cane	WO
1212.94	Chicory roots	WO
1212.99	Other	WO
1213.00	Cereal straw and husks, unprepared, whether or not chopped, ground, pressed or in the form of pellets.	WO
1214	Swedes, mangolds, fodder roots, hay, lucerne (alfalfa), clover, sainfoin, forage kale, lupines, vetches and similar forage products, whether or not in the form of pellets.	
1214.10	Lucerne (alfalfa) meal and pellets	CC
1214.90	Other	CC
13	CHAPTER 13 LAC; GUMS, RESINS AND OTHER VEGETABLE SAPS AND EXTRACTS	
1301	Lac; natural gums, resins, gum-resins and oleoresins (for example, balsams).	
1301.20	Gum Arabic	CC
1301.90	Other	CC
1302	Vegetable saps and extracts; pectic substances, pectinates and pectates; agar-agar and other mucilages and thickeners, whether or not modified, derived from vegetable products.	
1302.1	Vegetable saps and extracts:	
1302.11	Opium	CC
1302.12	Of liquorice	CC
1302.13	Of hops	CC
1302.19	Other	CC except from 1211.20
1302.20	Pectic substances, pectinates and pectates	CC
1302.3	Mucilages and thickeners, whether or not modified, derived from vegetable products:	
1302.31	Agar-agar	CC
1302.32	Mucilages and thickeners, whether or not modified, derived from locust beans, locust bean seeds or guar seeds	CC
1302.39	Other	CC
14	CHAPTER 14 VEGETABLE PLAITING MATERIALS; VEGETABLE PRODUCT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1401	Vegetable materials of a kind used primarily for plaiting (for example, bamboos, rattans, reeds, rushes, osier, raffia, cleaned, bleached or dyed cereal straw, and lime bark).	
1401.10	Bamboos	CC
1401.20	Rattans	CC
1401.90	Other	CC
1404	Vegetable product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1404.20	Cotton linters	CC
1404.90	Other	CC
	SECTION III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CLEAVAGE PRODCUCTS; PREPARED EDIBLE FATS; ANIMAL OR VEGETABLE WAXES	
15	CHAPTER 15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CLEAVAGE PRODUCTS; PREPARED EDIBLE FATS; ANIMAL OR VEGETABLE WAXES	
1501	Pig fat (including lard) and poultry fat, other than that of heading 02.09 or 15.03.	
1501.10	Lard	CC
1501.20	Other pig fat	CC
1501.90	Other	CC
1502	Fats of bovine animals, sheep or goat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15.03.	
1502.10	Tallow	CC
1502.90	Other	CC
1503.00	Lard stearin, lard oil, oleostearin, oleo-oil and tallow oil, not emulsified or mixed or otherwise prepared.	CC
1504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of fish or marine mammal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1504.10	Fish-liver oils and their fractions	CC
1504.20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of fish, other than liver oils.	CC
1504.30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of marine mammals	CC
1505.00	Wool grease and fatty substances derived therefrom (including lanolin).	CC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1506.00	Other animal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CC
1507	Soya-bean oil and its fraction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1507.10	Crude oil, whether or not degummed	CC
1507.90	Other	CC
1508	Ground-nut oil and its fraction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1508.10	Crude oil	CC
1508.90	Other	CC
1509	Olive oil and its fraction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1509.10	Virgin	CC
1509.90	Other	CC
1510.00	Other oils and their fractions, obtained solely from olive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including blends of these oils or fractions with oils or fractions of heading 15.09.	CC
1511	Palm oil and its fraction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1511.10	Crude oil	CC
1511.90	Other	CC
1512	Sunflower-seed, safflower or cotton-seed oil and fractions thereof,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1512.1	Sunflower-seed or safflower oil and fractions thereof:	
1512.11	Crude oil	CC
1512.19	Other	CC
1512.2	Cotton-seed oil and its fractions:	
1512.21	Crude oil, whether or not gossypol has been removed	CC
1512.29	Other	CC
1513	Coconut (copra), palm kernel or babassu oil and fractions thereof,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1513.1	Coconut (copra)oil and its fractions:	
1513.11	Crude oil	CC
1513.19	Other	CC
1513.2	Palm kernel or babassu oil and fractions thereof:	
1513.21	Crude oil	CC
1513.29	Other	CC
1514	Rape, colza or mustard oil and fractions thereof,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1514.1	Low erucic acid rape or colza oil and its fractions:	
1514.11	Crude oil	CC
1514.19	Other	CC
1514.9	Other:	
1514.91	Crude oil	CC
1514.99	Other	CC
1515	Other fixed vegetable fats and oils (including jojoba oil) and their fraction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1515.1	Linseed oil and its fractions:	
1515.11	Crude oil	CC
1515.19	Other	CC
1515.2	Maize (corn) oil and its fractions:	
1515.21	Crude oil	CC
1515.29	Other	CC
1515.30	Castor oil and its fractions	CC
1515.50	Sesame oil and its fractions	CC
1515.90	Other	CC
1516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partly or wholly hydrogenated, inter-esterified, re-esterified, or elaidinised,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further prepared.	
1516.10	Animal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CC
1516.20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CC
1517	Margarine; edible mixtures or preparations of animal or vegetable fats or oils or of fractions of different fats or oils of this Chapter, other than edible fats or oils or their fractions of heading 15.16.	
1517.10	Margarine, excluding liquid margarine	CTH
1517.90	Other	CTH
1518.00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boiled, oxidised, dehydrated, sulphurised, blown, polymerised by heat in vacuum or in inert gas or otherwise chemically modified, excluding those of heading 15.16; inedible mixtures or preparations of animal or vegetable fats or oils or of fractions of different fats or oils of this Chapter,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CTH
1520.00	Glycerol, crude; glycerol waters and glycerol lyes.	CTH
1521	Vegetable waxes (other than triglycerides), beeswax, other insect waxes and spermaceti, whether or not refined or coloured.	
1521.10	Vegetable waxes	CC
1521.90	Other	CC
1522.00	Degras; residues resulting from the treatment of fatty substances or animal or vegetable waxes.	CC

SECTION IV PREPARED FOODSTUFFS;
BEVERAGES, SPIRITS AND VINEGAR;
TOBACCO AND MANUFACTURED TOBACCO
SUBSTITUTES (Chapters 16 – 24)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16	CHAPTER 16 PREPARATIONS OF MEAT, OF FISH OR OF CRUSTACEANS, MOLLUSCS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S	
1601.00	Sausages and similar products, of meat, meat offal or blood; food preparations based on these products.	CC except from chapters 1 and 2
1602	Other prepared or preserved meat, meat offal or blood.	
1602.10	Homogenised preparations	CC except from chapters 1 and 2
1602.20	Of liver of any animal	CC except from chapters 1 and 2
1602.3	Of poultry of heading 01.05:	
1602.31	Of turkeys	CC except from chapters 1 and 2
1602.32	Of fowls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CC except from chapters 1 and 2
1602.39	Other	CC except from chapters 1 and 2
1602.4	Of swine:	
1602.41	Hams and cuts thereof	CC except from chapters 1 and 2
1602.42	Shoulders and cuts thereof	CC except from chapters 1 and 2
1602.49	Other, including mixtures	CC except from chapters 1 and 2
1602.50	Of bovine animals	CC except from chapters 1 and 2
1602.90	Other, including preparations of blood of any animal	CC except from chapters 1 and 2
1603.00	Extracts and juices of meat, fish or crustaceans, molluscs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s.	CC except from chapters 1 and 2
1604	Prepared or preserved fish; caviar and caviar substitutes prepared from fish eggs.	
1604.1	Fish, whole or in pieces, but not minced:	
1604.11	Salmon	CC
1604.12	Herrings	CC
1604.13	Sardines, sardinella and brisling or sprats	CC
1604.14	Tunas, skipjack and bonito (*Sarda spp.*)	CC
1604.15	Mackerel	CC
1604.16	Anchovies	CC
1604.17	Eels	CC
1604.19	Other	CC
1604.20	Other prepared or preserved fish	CC
1604.3	Caviar and caviar substitutes:	
1604.31	Caviar	CC
1604.32	Caviar substitutes	CC
1605	Crustaceans, molluscs and other aquatic invertebrates, prepared or preserved.	
1605.10	Crab	CC
1605.2	Shrimps and prawns:	
1605.21	Not in airtight container	CC
1605.29	Other	CC
1605.30	Lobster	CC
1605.40	Other crustaceans	CC
1605.5	Molluscs:	
1605.51	Oysters	CC
1605.52	Scallops, including queen scallops	CC
1605.53	Mussels	CC
1605.54	Cuttle fish and squid	CC
1605.55	Octopus	CC
1605.56	Clams, cockles and arkshells	CC
1605.57	Abalone	CC
1605.58	Snails, other than sea snails	CC
1605.59	Other	CC
1605.6	Other acquatic invertebrates:	
1605.61	Sea cucumbers	CC
1605.62	Sea urchins	CC
1605.63	Jellyfish	CC
1605.69	Other	CC
17	CHAPTER 17 SUGARS AND SUGAR CONFECTIONERY	
1701	Cane or beet sugar and chemically pure sucrose, in solid form.	
1701.1	Raw sugar not containing added flavouring or colouring matter:	
1701.12	Beet sugar	CC
1701.13	Cane sugar specified in Subheading Note 2 to this Chapter	CC
1701.14	Other cane sugar	CC
1701.9	Other:	
1701.91	Containing added flavouring or colouring matter	CC
1701.99	Other	CC
1702	Other sugars, including chemically pure lactose, maltose, glucose and fructose, in solid form; sugar syrups not containing added flavouring or colouring matter; artificial honey, whether or not mixed with natural honey; caramel.	
1702.1	Lactose and lactose syrup:	
1702.11	Containing by weight 99 % or more lactose, expressed as anhydrous lactose, calculated on the dry matter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1702.19	Other	CTH
1702.20	Maple sugar and maple syrup	CTH
1702.30	Glucose and glucose syrup, not containing fructose or containing in the dry state less than 20 % by weight of fructose	CTH
1702.40	Glucose and glucose syrup, containing in the dry state at least 20 % but less than 50 % by weight of fructose, excluding invert sugar	CTH
1702.50	Chemically pure fructose	CTH
1702.60	Other fructose and fructose syrup, containing in the dry state more than 50 % by weight of fructose, excluding invert sugar	CTH
1702.90	Other, including invert sugar and other sugar and sugar syrup blends containing in the dry state 50 % by weight of fructose	CTH except from heading 0409
1703	Molasses resulting from the extraction or refining of sugar.	
1703.10	Cane molasses	CTH
1703.90	Other	CTH
1704	Sugar confectionery (including white chocolate), not containing cocoa.	
1704.10	Chewing gum, whether or not sugar-coated	CTH
1704.90	Other	CTH
18	CHAPTER 18 COCOA AND COCOA PREPARATIONS	
1801.00	Cocoa beans, whole or broken, raw or roasted.	CTH
1802.00	Cocoa shells, husks, skins and other cocoa waste.	CTH
1803	Cocoa paste, whether or not defatted.	
1803.10	Not defatted	CTH
1803.20	Wholly or partly defatted	CTH
1804.00	Cocoa butter, fat and oil.	CTH
1805.00	Cocoa powde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CTH
1806	Chocolate and other food preparations containing cocoa.	
1806.10	Cocoa powde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CTH
1806.20	Other preparations in blocks, slabs or bars weighing more than 2 kg or in liquid, paste, powder, granular or other bulk form in containers or immediate packings, of a content exceeding 2 kg	CTH
1806.3	Other, in blocks, slabs or bars:	
1806.31	Filled	CTSH
1806.32	Not filled	CTSH
1806.90	Other	CTS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19	CHAPTER 19 PREPARATIONS OF CEREALS, FLOUR, STARCH OR MILK; PASTRYCOOKS' PRODUCTS	
1901	Malt extract; food preparations of flour, groats, meal, starch or malt extract, not containing cocoa or containing less than 40 % by weight of cocoa calculated on a totally defatted basi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 04.01 to 04.04, not containing cocoa or containing or containing less than 5 % by weight of cocoa calculated on a totally defatted basi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1901.10	Preparations for infant use, put up for retail sale	CTH except from chapter 4
1901.20	Mixes and doughs for the preparation of baker's wares of heading 19.05	CC except from chapter 4, heading 1006 and rice products of headings 1102 to 1104
1901.90	Other	CC except from chapter 4, heading 1006 and rice products of headings 1102 to 1104
1902	Pasta, whether or not cooked or stuffed (with meat or other substances) or otherwise prepared, such as spaghetti, macaroni, noodles, lasagne, gnocchi, ravioli, cannelloni; couscous, whether or not prepared.	
1902.1	Uncooked pasta, not stuffed or otherwise prepared:	
1902.11	Containing eggs	CTH
1902.19	Other	CTH
1902.20	Stuffed pasta, whether or not cooked or otherwise prepared	CTSH
1902.30	Other pasta	CTSH
1902.40	Couscous	CTSH
1903.00	Tapioca and substitutes therefor prepared from starch, in the form of flakes, grains, pearls, siftings or in similar forms	CTH
1904	Prepared foods obtained by the swelling or roasting of cereals or cereal products (for example, corn flakes); cereals (other than maize (corn)) in grain form or in the form of flakes or other worked grains (except flour, groats and meal), pre-cooked, or otherwise prepared, not elsewise specified or included.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1904.10	Prepared foods obtained by the swelling or roasting of cereals or cereal products	CTH
1904.20	Prepared foods obtained from unroasted cereal flakes or from mixtures of unroasted cereal flakes and roasted cereal flakes or swelled cereals	CTH
1904.30	Bulgur wheat	CTH
1904.90	Other	CC except from heading 1006
1905	Bread, pastry, cakes, biscuits and other bakers' wares, whether or not containing cocoa; communion wafers, empty cachets of a kind suitable for pharmaceutical use, sealing wafers, rice paper and similar products.	
1905.10	Crispbread	CTH
1905.20	Gingerbread and the like	CTH
1905.3	Sweet biscuits; waffles and wafers:	
1905.31	Sweet biscuits	CTH
1905.32	Waffles and wafers	CTH
1905.40	Rusks, toasted bread and similar toasted products	CTH
1905.90	Other	CTH
20	CHAPTER 20 PREPARATIONS OF VEGETABLES, FRUIT, NUTS OR OTHER PARTS OF PLANTS	
2001	Vegetables, fruit, nuts and other edible parts of plants, prepared or preserved by vinegar or acetic acid.	
2001.10	Cucumbers and gherkins	CTH
2001.90	Other	CTH
2002	Tomatoes prepared or preserved otherwise than by vinegar or acetic acid.	
2002.10	Tomatoes, whole or in pieces	CTH
2002.90	Other	CTH
2003	Mushrooms and truffles, prepared or preserved otherwise than by vinegar or acetic acid.	
2003.10	Mushrooms of the genus *Agaricus*	CTH
2003.90	Other	CTH
2004	Other vegetables prepared or preserved otherwise than by vinegar or acetic acid, frozen, other than products of heading 20.06.	
2004.10	Potatoes	CTH
2004.90	Other vegetables and mixtures of vegetables	CTH
2005	Other vegetables prepared or preserved otherwise than by vinegar or acetic acid, not frozen, other than products of heading 20.06.	
2005.10	Homogenised vegetables	CTH
2005.20	Potatoes	CTH
2005.40	Peas (*Pisum sativum*)	CTH
2005.5	Beans (*Vigna spp., Phaseolus spp.*):	
2005.51	Beans, shelled	CTH
2005.59	Other	CTH
2005.60	Asparagus	CTH
2005.70	Olives	CTH
2005.80	Sweet corn (*Zea mays var. saccharata*)	CTH
2005.9	Other vegetables and mixtures of vegetables:	
2005.91	Bamboo shoots	CTH
2005.99	Other	CTH
2006.00	Vegetables, fruit, nuts, fruit-peel and other parts of plants, preserved by sugar (drained, glacé or crystallised).	CTH
2007	Jams, fruit jellies, marmalades, fruit or nut purée and fruit or nut pastes, obtained by cooking,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2007.10	Homogenised preparations	CTH
2007.9	Other:	
2007.91	Citrus fruit	CTH
2007.99	Other	CTH
2008	Fruit, nuts and other edible parts of plants, otherwise prepared or preserved,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or spirit,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2008.1	Nuts, ground-nuts and other seeds, whether or not mixed together:	
2008.11	Ground-nuts	CTH
2008.19	Other, including mixtures	CTH
2008.20	Pineapples	CTH
2008.30	Citrus fruit	CTH
2008.40	Pears	CTH
2008.50	Apricots	CTH
2008.60	Cherries	CTH
2008.70	Peaches, including nectarines	CTH
2008.80	Strawberries	CTH
2008.9	Other, including mixtures other than those of subheading 2008.19:	
2008.91	Palm hearts	CTH
2008.93	Cranberries (*Vaccinium macrocarpon, Vaccinium oxycoccos, Vaccinium vitis-idaea*)	CTH
2008.97	Mixtures	CTH
2008.99	Other	CTH
2009	Fruit juices (including grape must) and vegetable juices, unfermented and not containing added spirit,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2009.1	Orange juice: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2009.11	Frozen	CTH or RVC(40)
2009.12	Not frozen, of a Brix value not exceeding 20	CTH or RVC(40)
2009.19	Other	CTH or RVC(40)
2009.2	Grapefruit (including pomelo) juice:	
2009.21	Of a Brix value not exceeding 20	CTH or RVC(40)
2009.29	Other	CTH or RVC(40)
2009.3	Juice of any other single citrus fruit:	
2009.31	Of a Brix value not exceeding 20	CTH or RVC(40)
2009.39	Other	CTH or RVC(40)
2009.4	Pineapple juice:	
2009.41	Of a Brix value not exceeding 20	CTH or RVC(40)
2009.49	Other	CTH or RVC(40)
2009.50	Tomato juice	CTH or RVC(40)
2009.6	Grape juice (including grape must):	
2009.61	Of a Brix value not exceeding 30	CTH or RVC(40)
2009.69	Other	CTH or RVC(40)
2009.7	Apple juice:	
2009.71	Of a Brix value not exceeding 20	CTH or RVC(40)
2009.79	Other	CTH or RVC(40)
2009.8	Juice of any other single fruit or vegetable:	
2009.81	Cranberry (*Vaccinium macrocarpon, Vaccinium oxycoccos, Vaccinium vitis-idaea)* juice	CTH or RVC(40)
2009.89	Other	CTH or RVC(40)
2009.90	Mixtures of juices	CTH or RVC(40)
21	CHAPTER 21 MISCELLANEOUS EDIBLE PREPARATIONS	
2101	Extracts, essences and concentrates, of coffee, tea or maté and preparations with a basis of these products or with a basis of coffee, tea or maté; roasted chicory and other roasted coffee substitutes, and extracts, essences and concentrates thereof.	
2101.1	Extracts, essences and concentrates, of coffee, and preparations with a basis of these extracts, essences or concentrates or with a basis of coffee:	
2101.11	Extracts, essences and concentrates	CTH
2101.12	Preparations with a basis of extracts, essences or concentrates or with a basis of coffee	CTH
2101.20	Extracts, essences and concentrates, of tea or maté, and preparations with a basis of these extracts, essences or concentrates or with a basis of tea or maté	CTH
2101.30	Roasted chicory and other roasted coffee substitutes, and extracts, essences and concentrates thereof	CTH
2102	Yeasts (active or inactive); other single-cell micro-organisms, dead (but not including vaccines of heading 30.02); prepared baking powders.	
2102.10	Active yeasts	CTH
2102.20	Inactive yeasts; other single-cell micro-organisms, dead	CTH
2102.30	Prepared baking powders	CTH
2103	Sauces and preparations therefor; mixed condiments and mixed seasoning; mustard flour and meal and prepared mustard.	
2103.10	Soya sauce	CTH
2103.20	Tomato ketchup and other tomato sauces	CTH
2103.30	Mustard flour and meal and prepared mustard	CTH
2103.90	Other	CTSH
2104	Soups and broths and preparations therefor; homogenised composite food preparations.	
2104.10	Soups and broths and preparations therefor	CTSH
2104.20	Homogenised composite food preparations	CTSH
2105.00	Ice cream and other edible ice, whether or not containing cocoa.	CTH
2106	Food preparation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2106.10	Protein concentrates and textured protein substances	CTSH
2106.90	Other	CTSH except from subheading 1211.20 or from ginseng products of subheading 1302.19
22	CHAPTER 22 BEVERAGES, SPIRITS AND VINEGAR	
2201	Waters, including natural or artificial mineral waters and aerated waters,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nor flavoured; ice and snow.	
2201.10	Mineral waters and aerated waters	CTH
2201.90	Other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2202	Waters, including mineral waters and aerated waters,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or flavoured, and other non-alcoholic beverages, not including fruit or vegetable juices of heading 20.09.	
2202.10	Waters, including mineral waters and aerated waters,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or flavoured	CTH
2202.90	Other	CTH except from subheading 1211.20 or from ginseng products of subheading 1302.19
2203.00	Beer made from malt.	CTH
2204	Wine of fresh grapes, including fortified wines; grape must other than that of heading 20.09.	
2204.10	Sparkling wine	CTH
2204.2	Other wine; grape must with fermentation prevented or arrested by the addition of alcohol:	
2204.21	In containers holding 2 ℓ or less	CTH
2204.29	Other	CTH
2204.30	Other grape must	CTH
2205	Vermouth and other wine of fresh grapes flavoured with plants or aromatic substances.	
2205.10	In containers holding 2 ℓ or less	CTH
2205.90	Other	CTH
2206.00	Other fermented beverages (for example, cider, perry, mead); mixtures of fermented beverages and mixtures of fermented beverages and non-alcoholic beverag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CTH
2207	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80 % vol or higher; ethyl alcohol and other spirits, denatured, of any strength.	
2207.10	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80 % vol or higher	CTH
2207.20	Ethyl alcohol and other spirits, denatured, of any strength	CTH
2208	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 vol; spirits, liqueurs and other spirituous, beverages.	
2208.20	Spirits obtained by distilling grape wine or grape marc	CTH
2208.30	Whiskies	CTH
2208.40	Rum and other spirits obtained by distilling fermented sugarcane products	CTH
2208.50	Gin and Geneva	CTH
2208.60	Vodka	CTH
2208.70	Liqueurs and cordials	CTH
2208.90	Other	CTH
2209.00	Vinegar and substitutes for vinegar obtained from acetic acid.	CTH
23	CHAPTER 23 RESIDUES AND WASTE FROM THE FOOD INDUSTRIES; PREPARED ANIMAL FODDER	
2301	Flours, meals and pellets, of meat or meat offal, of fish or of crustaceans, molluscs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s, unfit for human consumption; greaves.	
2301.10	Flours, meals and pellets, of meat or meat offal; greaves	CTH
2301.20	Flours, meals and pellets, of fish or of crustaceans, molluscs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s	CTH
2302	Bran, sharps and other residues, whether or not in the form of pellets, derived from the sifting, milling or other working of cereals or of leguminous plants.	
2302.10	Of maize (corn)	CTH
2302.30	Of wheat	CTH
2302.40	Of other cereals	CTH
2302.50	Of leguminous plants	CTH
2303	Residues of starch manufacture and similar residues, beet-pulp, bagasse and other waste of sugar manufacture, brewing or distilling dregs and waste, whether or not in the form of pellets.	
2303.10	Residues of starch manufacture and similar residues	CTH
2303.20	Beet-pulp, bagasse and other waste of sugar manufacture	CTH
2303.30	Brewing or distilling dregs and waste	CTH
2304.00	Oil-cake and other solid residues, whether or not ground or in the form of pellets, resulting from the extraction of soyabean oil.	CTH
2305.00	Oil-cake and other solid residues, whether or not ground or in the form of pellets, resulting from the extraction of ground-nut oil.	CTH
2306	Oil-cake and other solid residues, whether or not ground or in the form of pellets, resulting from the extraction of vegetable fats or oil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23.04. or 23.05.	
2306.10	Of cotton seeds	CTH
2306.20	Of linseed	CTH
2306.30	Of sunflower seeds	CTH
2306.4	Of rape or colza seeds:	
2306.41	Of low erucic acid rape or colza seeds	CTH
2306.49	Other	CTH
2306.50	Of coconut or copra	CTH
2306.60	Of palm nuts or kernels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2306.90	Other	CTH
2307.00	Wine lees; argol.	CTH
2308.00	Vegetable materials and vegetable waste, vegetable residues and by-products, whether or not in the form of pellets, of a kind used in animal feeding,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CTH
2309	Preparations of a kind used in animal feeding.	
2309.10	Dog or cat food, put up for retail sale	CTH
2309.90	Other	CTH
24	CHAPTER 24 TOBACCO AND MANUFACTURED TOBACCO SUBSTITUTES	
2401	Unmanufactured tobacco; tobacco refuse.	
2401.10	Tobacco, not stemmed/stripped	CC
2401.20	Tobacco, partly or wholly stemmed/stripped	CC
2401.30	Tobacco refuse	CC
2402	Cigars, cheroots, cigarillos and cigarettes, of tobacco or of tobacco substitutes.	
2402.10	Cigars, cheroots, and cigarillos containing tobacco	CTH
2402.20	Cigarettes containing tobacco	CTH
2402.90	Other	CTH
2403	Other manufactured tobacco and manufactured tobacco substitutes; "homogenised" or "reconstituted" tobacco; tobacco extracts and essences.	
2403.1	Smoking tobacco, whether or not containing tobacco substitutes in any proportion:	
2403.11	Water pipe tobacco specified in Subheading Note 1 to this Chapter	CTH
2403.19	Other	CTH
2403.9	Other:	
2403.91	Homogenised or "reconstituted" tobacco	CTH
2403.99	Other	CTH
	SECTION V MINERAL PRODUCTS (Chapters 25 – 27)	
25	CHAPTER 25 SALT; SULPHUR; EARTHS AND STONE; PLASTERING MATERIALS, LIME AND CEMENT	
2501.00	Salt (including table salt and denatured salt) and pure sodium chloride, whether or not in aqueous solution or containing added anti-caking or free-flowing agents; sea water	CTH
2502.00	Unroasted iron pyrites	CTH
2503.00	Sulphur of all kinds, other than sublimed sulphur, precipitated sulphur and colloidal sulphur	CTH
2504	Natural graphite.	
2504.10	In powder or in flakes	CTH
2504.90	Other	CTH
2505	Natural sands of all kinds, whether or not coloured, other than metalbearing sands of Chapter 26.	
2505.10	Silica sands and quartz sands	CTH
2505.90	Other	CTH
2506	Quartz (other than natural sands); quartzite, whether or not roughly trimmed or merely cut, by sawing or otherwise, into blocks or slabs of a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ape.	
2506.10	Quartz	CTH
2506.20	Quartzite	CTH
2507.00	Kaolin and other kaolinic clays, whether or not calcined	CTH
2508	Other clays (not including expanded clays of heading 68.06), andalusite, kyanite and sillimanite, whether or not calcined; mullite; chamotte or dinas earths.	
2508.10	Bentonite	CTH
2508.30	Fire-clay	CTH
2508.40	Other clays	CTH
2508.50	Andalusite, kyanite and sillimanite	CTH
2508.60	Mullite	CTH
2508.70	Chamotte or dinas earths	CTH
2509.00	Chalk	CTH
2510	Natural calcium phosphates, natural aluminium calcium phosphates and phosphatic chalk.	
2510.10	Unground	CTH
2510.20	Ground	CTH
2511	Natural barium sulphate (barytes); natural barium carbonate (witherite), whether or not calcined, other than barium oxide of heading 28.16.	
2511.10	Natural barium sulphate (barytes)	CTH
2511.20	Natural barium carbonate (witherite)	CTH
2512.00	Siliceous fossil meals (for example, kieselguhr, tripolite and diatomite) and similar siliceous earths, whether or not calcined, of an apparent specific gravity of 1 or less	CTH
2513	Pumice stone; emery; natural corundum, natural garnet and other natural abrasives, whether or not heat-treated.	
2513.10	Pumice stone	CTH
2513.20	Emery, natural corundum, natural garnet and other natural abrasives	CTH
2514.00	Slate, whether or not roughly trimmed or merely cut, by sawing or otherwise, into blocks or slabs of a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ape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2515	Marble, travertine, ecaussine and other calcareous monumental or building stone of an apparent specific gravity of 2.5 or more, and alabaster, whether or not roughly trimmed or merely cut, by sawing or otherwise, into blocks or slabs of a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ape.	
2515.1	Marble and travertine:	
2515.11	Crude or roughly trimmed	CTH
2515.12	Merely cut, by sawing or otherwise, into blocks or slabs of a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ape	CTH
2515.20	Ecaussine and other calcareous monumental or building stone; alabaster	CTH
2516	Granite, porphyry, basalt, sandstone and other monumental or building stone, whether or not roughly trimmed or merely cut, by sawing or otherwise, into blocks or slabs of a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ape.	
2516.1	Granite:	
2516.11	Crude or roughly trimmed	CTH
2516.12	Merely cut, by sawing or otherwise, into blocks or slabs of a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ape	CTH
2516.20	Sandstone	CTH
2516.90	Other monumental or building stone	CTH
2517	Pebbles, gravel, broken or crushed stone, of a kind commonly used for concrete aggregates, for road metalling or for railway or other ballast, shingle and flint, whether or not heat-treated; macadam of slag, dross or similar industrial waste,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the materials cited in the first part of the heading; tarred macadam; granules, chippings and powder, of stones of heading 25.15 or 25.16, whether or not heat-treated.	
2517.10	Pebbles, gravel, broken or crushed stone, of a kind commonly used for concrete aggregates, for road metalling or for railway or other ballast, shingle and flint, whether or not heat-treated	CTH
2517.20	Macadam of slag, dross or similar industrial waste,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the materials cited in subheading 2517.10	CTH
2517.30	Tarred macadam	CTH
2517.4	Granules, chippings and powder, of stones of heading 25.15 or 25.16, whether or not heat-treated:	
2517.41	Of marble	CTH
2517.49	Other	CTH
2518	Dolomite, whether or not calcined or sintered, including dolomite roughly trimmed or merely cut, by sawing or otherwise, into blocks or slabs of a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ape; dolomite ramming mix.	
2518.10	Dolomite, not calcined or sintered	CTH
2518.20	Calcined or sintered dolomite	CTH
2518.30	Dolomite ramming mix	CTH
2519	Natural magnesium carbonate (magnesite); fused magnesia; dead-burned (sintered) magnesia, whether or not containing small quantities of other oxides added before sintering; other magnesium oxide, whether or not pure.	
2519.10	Natural magnesium carbonate (magnesite)	CTH
2519.90	Other	CTH
2520	Gypsum; anhydrite; plasters (consisting of calcined gypsum or calcium sulphate) whether or not coloured, with or without small quantities of accelerators or retarders.	
2520.10	Gypsum; anhydrite	CTH
2520.20	Plasters	CTH
2521.00	Limestone flux; limestone and other calcareous stone, of a kind used for the manufacture of lime or cement	CTH
2522	Quicklime, slaked lime and hydraulic lime, other than calcium oxide and hydroxide of heading 28.25.	
2522.10	Quicklime	CTH
2522.20	Slaked lime	CTH
2522.30	Hydraulic lime	CTH
2523	Portland cement, aluminous cement, slag cement, supersulphate cement and similar hydraulic cements, whether or not coloured or in the form of clinkers.	
2523.10	Cement clinkers	CTH
2523.2	Portland cement:	
2523.21	White cement, whether or not artificially coloured	CTH
2523.29	Other	CTH
2523.30	Aluminous cement	CTH
2523.90	Other hydraulic cements	CTH
2524	Asbestos.	
2524.10	Crocidolite	CTH
2524.90	Other	CTH
2525	Mica, including splittings; mica waste.	
2525.10	Crude mica and mica rifted into sheets or splittings	CTH
2525.20	Mica powder	CTH
2525.30	Mica waste	CTH
2526	Natural steatite, whether or not roughly trimmed or merely cut, by sawing or otherwise, into blocks or slabs of a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ape; talc.	
2526.10	Not crushed, not powdered	CTH
2526.20	Crushed or powdered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2528.00	Natural borates and concentrates thereof (whether or not calcined), but not including borates separated from natural brine; natural boric acid containing not more than 85 % of H3BO3 calculated on the dry weight.	CTH
2529	Feldspar; leucite; nepheline and nepheline syenite; fluorspar.	
2529.10	Feldspar	CTH
2529.2	Fluorspar:	
2529.21	Containing by weight 97 % or less of calcium fluoride	CTH
2529.22	Containing by weight more than 97 % of calcium fluoride	CTH
2529.30	Leucite; nepheline and nepheline syenite	CTH
2530	Mineral substanc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2530.10	Vermiculite, perlite and chlorites, unexpanded	CTH
2530.20	Kieserite, epsomite (natural magnesium sulphates)	CTH
2530.90	Other	CTH
26	CHAPTER 26 ORES, SLAG AND ASH	
2601	Iron ores and concentrates, including roasted iron pyrites.	
2601.1	Iron ores and concentrates, other than roasted iron pyrites:	
2601.11	Non-agglomerated	CTH
2601.12	Agglomerated	CTH
2601.20	Roasted iron pyrites	CTH
2602.00	Manganese ores and concentrates, including ferruginous manganese ores and concentrates with a manganese content of 20 % or more, calculated on the dry weight	CTH
2603.00	Copper ores and concentrates	CTH
2604.00	Nickel ores and concentrates.	CTH
2605.00	Cobalt ores and concentrates	CTH
2606.00	Aluminium ores and concentrates	CTH
2607.00	Lead ores and concentrates	CTH
2608.00	Zinc ores and concentrates	CTH
2609.00	Tin ores and concentrates	CTH
2610.00	Chromium ores and concentrates	CTH
2611.00	Tungsten ores and concentrates	CTH
2612	Uranium or thorium ores and concentrates.	
2612.10	Uranium ores and concentrates	CTH
2612.20	Thorium ores and concentrates	CTH
2613	Molybdenum ores and concentrates.	
2613.10	Roasted	CTH
2613.90	Other	CTH
2614.00	Titanium ores and concentrates	CTH
2615	Niobium, tantalum, vanadium or zirconium ores and concentrates.	
2615.10	Zirconium ores and concentrates	CTH
2615.90	Other	CTH
2616	Precious metal ores and concentrates.	
2616.10	Silver ores and concentrates	CTH
2616.90	Other	CTH
2617	Other ores and concentrates.	
2617.10	Antimony ores and concentrates	CTH
2617.90	Other	CTH
2618.00	Granulated slag (slag sand) from the manufacture of iron or steel	CTH
2619.00	Slag, dross (other than granulated slag), scalings and other waste from the manufacture of iron or steel	CTH
2620	Slag, ash and residues (other than from the manufacture of iron or steel) containing metals, arsenic or their compounds.	
2620.1	Containing mainly zinc:	
2620.11	Hard zinc spelter	CTH
2620.19	Other	CTH
2620.2	Containing mainly lead:	
2620.21	Leaded gasoline sludges and leaded anti-knock compound sludges	CTH
2620.29	Other	CTH
2620.30	Containing mainly copper	CTH
2620.40	Containing mainly aluminium	CTH
2620.60	Containing arsenic, mercury, thallium or their mixtures, of a kind used for the extraction of arsenic or those metals or for the manufacture of their chemical compounds	CTH
2620.9	Other:	
2620.91	Containing antimony, beryllium, cadmium, chromium or their mixtures	CTH
2620.99	Other	CTH
2621	Other slag and ash, including seaweed ash (kelp); ash and residues from the incineration of municipal waste.	
2621.10	Ash and residues from the incineration of municipal waste	CTH
2621.90	Other	CTH
27	CHAPTER 27 MINERAL FUELS, MINERAL OILS AND PRODUCTS OF THEIR DISTILLATION; BITUMINOUS SUBSTANCES; MINERAL WAX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a "chemical reaction" i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that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a molecule. The following are not considered to be chemical reac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definition. (a) dissolving in water or other solvents; (b) the elimination of solvents, including solvent water; or (c) the addition or elimination of water of crystallization. For the purposes of heading 27.10, the following processes confer origin: (a) Atmospheric distillation: A separation process in which petroleum oils are converted, in a distillation tower, into fractions according to boiling point and the vapor then condensed into different liquefied fractions. (b) Vacuum distillation: Distillation at a pressure below atmospheric but not so low that it would be classed as molecular distillation.	
2701	Coal; briquettes, ovoids and similar solid fuels manufactured from coal.	
2701.1	Coal, whether or not pulverised, but not agglomerated:	
2701.11	Anthracite	**CTH**
2701.12	Bituminous coal	**CTH**
2701.19	Other coal	**CTH**
2701.20	Briquettes, ovoids and similar solid fuels manufactured from coal	**CTH**
2702	Lignite, whether or not agglomerated, excluding jet.	
2702.10	Lignite, whether or not pulverised, but not agglomerated	**CTH**
2702.20	Agglomerated lignite	**CTH**
2703.00	Peat (including peat litter), whether or not agglomerated	**CTH**
2704.00	Coke and semi-coke of coal, of lignite or of peat, whether or not agglomerated; retort carbon	**CTH**
2705.00	Coal gas, water gas, producer gas and similar gases, other than petroleum gases and other gaseous hydrocarbons	**CTH**
2706.00	Tar distilled from coal, from lignite or from peat, and other mineral tars, whether or not dehydrated or partially distilled, including reconstituted tars	**CTH**
2707	Oils and other products of the distillation of high temperature coal tar; similar products in which the weight of the aromatic constituents exceeds that of the non-aromatic constituents.	
2707.10	Benzol (benzene)	**CTH, or CTSH provided that the good resulting from such a change is the product of a chemical reaction**
2707.20	Toluol (toluene)	**CTH, or CTSH provided that the good resulting from such a change is the product of a chemical reaction**
2707.30	Xylol (xylenes)	**CTH, or CTSH provided that the good resulting from such a change is the product of a chemical reaction**
2707.40	Naphthalene	**CTH, or CTSH provided that the good resulting from such a change is the product of a chemical reaction**
2707.50	Other aromatic hydrocarbon mixtures of which 65 % or more by volume (including losses) distils at 250℃ by the ASTM D 86 method	**CTH, or CTSH provided that the good resulting from such a change is the product of a chemical reaction**
2707.9	Other: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2707.91	Creosote oils	**CTH, or CTSH provided that the good resulting from such a change is the product of a chemical reaction**
2707.99	Other	**CTH, or CTSH provided that the good resulting from such a change is the product of a chemical reaction**
2708	Pitch and pitch coke, obtained from coal tar or from other mineral tars.	
2708.10	Pitch	**CTH**
2708.20	Pitch coke	**CTH**
2709.00	Petroleum oils and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crude	**CTH**
2710	Petroleum oils and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other than crude; preparation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containing by weight 70 % or more of petroleum oils or of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these oils being the basic constituents of the preparations; waste oils.	
2710.1	Petroleum oils and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other than crude) and preparation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containing by weight 70 % or more of petroleum oils or of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these oils being the basic constituents of the preparations, other than those containing biodiesel and other than waste oils:	
2710.12	Light oils and preparations	**CTH, or a change from any other good of heading 2710 provided that the good resulting from such a change is the product of a chemical reaction, atmospheric distillation or vacuum distillation**
2710.19	Other	**CTH, or a change from any other good of heading 2710 provided that the good resulting from such a change is the product of a chemical reaction, atmospheric distillation or vacuum distillation**
2710.20	Petroleum oils and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other than crude) and preparation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containing by weight 70 % or more of petroleum oils or of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these oils being the basic constituents of the preparations, containing biodiesel and other than waste oils	**CTH, or a change from any other good of heading 2710 provided that the good resulting from such a change is the product of a chemical reaction, atmospheric distillation or vacuum distillation**
2710.9	Waste oils:	
2710.91	Containing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polychlorinated terphenyls (PCTs) or polybrominated biphenyls (PBBs)	**CTH, or a change from any other good of heading 2710 provided that the good resulting from such a change is the product of a chemical reaction, atmospheric distillation or vacuum distillation**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2710.99	Other	**CTH, or a change from any other good of heading 2710 provided that the good resulting from such a change is the product of a chemical reaction, atmospheric distillation or vacuum distillation**
2711	Petroleum gases and other gaseous hydrocarbons.	
2711.1	Liquefied:	
2711.11	Natural gas	**CTSH except from subheading 2711.21**
2711.12	Propane	**CTSH except from subheading 2711.29**
2711.13	Butanes	**CTSH except from subheading 2711.29**
2711.14	Ethylene, propylene, butylene and butadiene	**CTSH except from subheading 2711.29**
2711.19	Other	**CTSH except from subheading 2711.29**
2711.2	In gaseous state:	
2711.21	Natural gas	**CTSH except from subheading 2711.11**
2711.29	Other	**CTSH except from subheadings 2711.12 to 2711.21**
2712	Petroleum jelly; paraffin wax, micro-crystalline petroleum wax, slack wax, ozokerite, lignite wax, peat wax, other mineral waxes, and similar products obtained by synthesis or by other processes, whether or not coloured.	
2712.10	Petroleum jelly	**CTH**
2712.20	Paraffin wax containing by weight less than 0.75 % of oil	**CTH**
2712.90	Other	**CTH**
2713	Petroleum coke, petroleum bitumen and other residues of petroleum oils or of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2713.1	Petroleum coke:	
2713.11	Not calcined	**CTH**
2713.12	Calcined	**CTH**
2713.20	Petroleum bitumen	**CTH**
2713.90	Other residues of petroleum oils or of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CTH**
2714	Bitumen and asphalt, natural; bituminous or oil shale and tar sands; asphaltites and asphaltic rocks.	
2714.10	Bituminous or oil shale and tar sands	**CTH**
2714.90	Other	**CTH**
2715.00	Bituminous mixtures based on natural asphalt, on natural bitumen, on petroleum bitumen, on mineral tar or on mineral tar pitch (for example, bituminous mastics, cut-backs)	**CTH**
2716.00	Electrical energy	**CTH**
	SECTION VI PRODUCTS OF THE CHEMICAL OR ALLIED INDUSTRIES (Chapters 28 – 38)	
Rule 1	Rule 1: Chemical Reaction Origin Rule Any good of Chapters 28 through 38, except a good of heading 3823 that is the product of a chemical reaction shall be considered to be an originating good if the chemical reaction occurr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Notwithstanding any of the line-by-line rules, the "chemical reaction" rule may be applied to any good classified in the above chapters. Note: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a "chemical reaction" i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the molecule. The following are not considered to be chemical reactions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product is an originating good: (a) dissolving in water or other solvents; (b) the elimination of solvents including solvent water; or (c) the addition or elimination of water of crystallization.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Rule 2	Rule 2. Purification Origin Rule For the purposes of Chapters 28 through 35 and Chapter 38, purification is considered to be origin conferring provided that the purification occurs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one of the following criteria is satisfied: a) purification of a good resulting in the elimination of 80 per cent based on the content of existing impurities; or b)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impurities resulting in a good suitable for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pplications: (i) pharmaceutical, medicinal, cosmetic, veterinary, or food grade substances; (ii) chemical products and reagents for analytical, diagnostic or laboratory uses; (iii) elements and components for use in micro-elements; (iv) specialized optical uses; (v) non toxic uses for health and safety; (vi) biotechnical use; (vii) carriers used in a separation process; or (viii) nuclear grade uses.	
Rule 3	Rule 3. Mixtures and Blends Origin Rule For the purposes of Chapters Chapter 30 and 31, heading 3302, subheading 3502.20, headings 3506 through 3507 and heading 3707, the deliberate and proportionally controlled mixing or blending (including dispersing) of materials to conform to predetermined specifications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which results in the production of a good having physical or chemical characteristics which are relevant to the purposes or uses of the good and are different from the input materials is considered to be origin conferring.	
Rule 4	Rule 4. Change in Particle Size Origin Rule For the purposes of Chapters 30 and 31: a) the deliberate and controlled reduction in particle size of a good, other than by merely crushing (or pressing)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resulting in a good having a defined particle size, defined particle size distribution or defined surface area, which are relevant to the purposes of the resulting good and have different physical or chemical characteristics from the input materials is considered to be origin conferring; or b) the deliberate and controlled modification in particle size of a good, other than by merely pressing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resulting in a good having a defined particle size, defined particle size distribution or defined surface area, which are relevant to the purposes of the resulting good and have different physical or chemical characteristics from the input materials is considered to be origin conferring.	
Rule 5	Rule 5. Standards Materials Origin Rule For the purposes of Chapters 28 through 32, Chapter 35 and Chapter 38, the production of standards materials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is considered to be origin conferring. For the purposes of this rule "standards materials" (including standard solutions) are preparations suitable for analytical, calibrating or referencing uses having precise degrees of purity or proportions which are certified by the manufacturer.	
Rule 6	Rule 6. Isomer Separation Origin Rule For the purposes of Chapters 28 through 32 and Chapter 35, the isolation or separation of isomers from mixtures of isomers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is to be considered origin conferring.	
Rule 7	Rule 7. Separation prohibition A non-originating material/component will not be deemed to have satisfied all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ese rules by reason of change from one classification to another merely as the result of the separation of one or more individual materials or components from a man-made mixture unless the isolated material/component, itself, also underwent a chemical reaction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28	CHAPTER 28 INORGANIC CHEMICALS; ORGANIC OR INORGANIC COMPOUNDS OF PRECIOUS METALS, OF RARE-EARTH METALS, OF RADIOACTIVE ELEMENTS OR OF ISOTOPES	
2801	Fluorine, chlorine, bromine and iodine.	
2801.10	Chlorine	**CTH**
2801.20	Iodine	**CTH**
2801.30	Fluorine; bromine	**CTH**
2802.00	Sulphur, sublimed or precipitated; colloidal sulphur	**CTH**
2803.00	Carbon (carbon blacks and other forms of carbon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CTH**
2804	Hydrogen, rare gases and other non-metals.	
2804.10	Hydrogen	**CTH**
2804.2	Rare gases:	
2804.21	Argon	**CTH**
2804.29	Other	**CTH**
2804.30	Nitrogen	**CTH**
2804.40	Oxygen	**CTH**
2804.50	Boron; tellurium	**CTH**
2804.6	Silicon:	
2804.61	Containing by weight not less than 99.99 % of silicon	**CTH**
2804.69	Other	**CTH**
2804.70	Phosphorus	**CTH**
2804.80	Arsenic	**CTH**
2804.90	Selenium	**CTH**
2805	Alkali or alkaline-earth metals; rare-earth metals, scandium and yttrium, whether or not intermixed or interalloyed; mercury.	
2805.1	Alkali or alkaline-earth metals:	
2805.11	Sodium	**CTH**
2805.12	Calcium	**CTH**
2805.19	Other	**CTH**
2805.30	Rare-earth metals, scandium and yttrium, whether or not intermixed or interalloyed	**CTH**
2805.40	Mercury	**CTH**
2806	Hydrogen chloride (hydrochloric acid); chlorosulphuric acid.	
2806.10	Hydrogen chloride (hydrochloric acid)	**CTSH**
2806.20	Chlorosulphuric acid	**CTSH**
2807.00	Sulphuric acid; oleum	**CTH**
2808.00	Nitric acid; sulphonitric acids	**CTH**
2809	Diphosphorus pentaoxide; phosphoric acid; polyphosphoric acids,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2809.10	Diphosphorus pentaoxide	**CTSH**
2809.20	Phosphoric acid and polyphosphoric acids	**CTSH**
2810.00	Oxides of boron; boric acids	**CTH**
2811	Other inorganic acids and other inorganic oxygen compounds of non-metals.	
2811.1	Other inorganic acids:	
2811.11	Hydrogen fluoride (hydrofluoric acid)	**CTSH**
2811.19	Other	**CTSH**
2811.2	Other inorganic oxygen compounds of non-metals:	
2811.21	Carbon dioxide	**CTSH**
2811.22	Silicon dioxide	**CTSH**
2811.29	Other	**CTSH**
2812	Halides and halide oxides of non-metals.	
2812.10	Chlorides and chloride oxides	**CTSH**
2812.90	Other	**CTSH**
2813	Sulphides of non-metals; commercial phosphorous trisulphide.	
2813.10	Carbon disulphide	**CTSH**
2813.90	Other	**CTSH**
2814	Ammonia, anhydrous or in aqueous solution.	
2814.10	Anhydrous ammonia	**CTH**
2814.20	Ammonia in aqueous solution	**CTH**
2815	Sodium hydroxide (caustic soda); potassium hydroxide (caustic potash); peroxides of sodium or potassium.	
2815.1	Sodium hydroxide (caustic soda):	
2815.11	Solid	**CTSH except from subheading 2815.12**
2815.12	In aqueous solution (soda lye or liquid soda)	**CTSH except from subheading 2815.11**
2815.20	Potassium hydroxide (caustic potash)	**CTSH**
2815.30	Peroxides of sodium or potassium	**CTSH**
2816	Hydroxide and peroxide of magnesium; oxides, hydroxides and peroxides, of strontium or barium.	
2816.10	Hydroxide and peroxide of magnesium	**CTSH**
2816.40	Oxides, hydroxides and peroxides, of strontium or barium	**CTSH**
2817.00	Zinc oxide; zinc peroxide	**CTH**
2818	Artificial corundum,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aluminium oxide; aluminium hydroxide.	
2818.10	Artificial corundum,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CTSH**
2818.20	Aluminium oxide, other than artificial corundum	**CTSH**
2818.30	Aluminium hydroxide	**CTSH**
2819	Chromium oxides and hydroxides.	
2819.10	Chromium trioxide	**CTS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2819.90	Other	CTSH
2820	Manganese oxides.	
2820.10	Manganese dioxide	CTSH
2820.90	Other	CTSH
2821	Iron oxides and hydroxides; earth colours containing 70 % or more by weight of combined iron evaluated as Fe2O3.	
2821.10	Iron oxides and hydroxides	CTSH
2821.20	Earth colours	CTSH
2822.00	Cobalt oxides and hydroxides; commercial cobalt oxides	CTH
2823.00	Titanium oxides	CTH
2824	Lead oxides; red lead and orange lead.	
2824.10	Lead monoxide (litharge, massicot)	CTH
2824.90	Other	CTH
2825	Hydrazine and hydroxylamine and their inorganic salts; other inorganic bases; other metal oxides, hydroxides and peroxides.	
2825.10	Hydrazine and hydroxylamine and their inorganic salts	CTSH
2825.20	Lithium oxide and hydroxide	CTSH
2825.30	Vanadium oxides and hydroxides	CTSH
2825.40	Nickel oxides and hydroxides	CTSH
2825.50	Copper oxides and hydroxides	CTSH
2825.60	Germanium oxides and zirconium dioxide	CTSH
2825.70	Molybdenum oxides and hydroxides	CTSH
2825.80	Antimony oxides	CTSH
2825.90	Other	CTH
2826	Fluorides; fluorosilicates, fluoroaluminates and other complex fluorine salts.	
2826.1	Fluorides:	
2826.12	Of aluminium	CTSH
2826.19	Other	CTSH
2826.30	Sodium hexafluoroaluminate (synthetic cryolite)	CTSH
2826.90	Other	CTSH
2827	Chlorides, chloride oxides and chloride hydroxides; bromides and bromide oxides; iodides and iodide oxides.	
2827.10	Ammonium chloride	CTSH
2827.20	Calcium chloride	CTSH
2827.3	Other chlorides:	
2827.31	Of magnesium	CTSH
2827.32	Of aluminium	CTSH
2827.35	Of nickel	CTSH
2827.39	Other	CTSH
2827.4	Chloride oxides and chloride hydroxides:	
2827.41	Of copper	CTSH
2827.49	Other	CTSH
2827.5	Bromides and bromide oxides:	
2827.51	Bromides of sodium or of potassium	CTSH
2827.59	Other	CTSH
2827.60	Iodides and iodide oxides	CTSH
2828	Hypochlorites; commercial calcium hypochlorite; chlorites; hypobromites.	
2828.10	Commercial calcium hypochlorite and other calcium hypochlorites	CTSH
2828.90	Other	CTSH
2829	Chlorates and perchlorates; bromates and perbromates; iodates and periodates.	
2829.1	Chlorates:	
2829.11	Of sodium	CTSH
2829.19	Other	CTSH
2829.90	Other	CTSH
2830	Sulphides; polysulphides,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2830.10	Sodium sulphides	CTSH
2830.90	Other	CTSH
2831	Dithionites and sulphoxylates.	
2831.10	Of sodium	CTSH
2831.90	Other	CTSH
2832	Sulphites; thiosulphates.	
2832.10	Sodium sulphites	CTSH
2832.20	Other sulphites	CTSH
2832.30	Thiosulphates	CTSH
2833	Sulphates; alums; peroxosulphates (persulphates).	
2833.1	Sodium sulphates:	
2833.11	Disodium sulphate	CTSH
2833.19	Other	CTSH
2833.2	Other sulphates:	
2833.21	Of magnesium	CTSH
2833.22	Of aluminium	CTSH
2833.24	Of nickel	CTSH
2833.25	Of copper	CTSH
2833.27	Of barium	CTSH
2833.29	Other	CTSH
2833.30	Alums	CTSH
2833.40	Peroxosulphates (persulphates)	CTSH
2834	Nitrites; nitrates.	
2834.10	Nitrites	CTSH
2834.2	Nitrates:	
2834.21	Of potassium	CTSH
2834.29	Other	CTS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2835	Phosphinates (hypophosphites), phosphonates (phosphites) and phosphates; polyphosphates,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2835.10	Phosphinates (hypophosphites) and phosphonates (phosphites)	CTSH
2835.2	Phosphates:	
2835.22	Of mono- or disodium	CTSH
2835.24	Of potassium	CTSH
2835.25	Calcium hydrogenorthophosphate ("dicalcium phosphate")	CTSH
2835.26	Other phosphates of calcium	CTSH
2835.29	Other	CTSH
2835.3	Polyphosphates:	
2835.31	Sodium triphosphate (sodium tripolyphosphate)	CTSH
2835.39	Other	CTSH
2836	Carbonates; peroxocarbonates (percarbonates); commercial ammonium carbonate containing ammonium carbamate.	
2836.20	Disodium carbonate	CTSH
2836.30	Sodium hydrogencarbonate (sodium bicarbonate)	CTSH
2836.40	Potassium carbonates	CTSH
2836.50	Calcium carbonate	CTSH
2836.60	Barium carbonate	CTSH
2836.9	Other:	
2836.91	Lithium carbonates	CTSH
2836.92	Strontium carbonate	CTSH
2836.99	Other	CTSH
2837	Cyanides, cyanide oxides and complex cyanides.	
2837.1	Cyanides and cyanide oxides:	
2837.11	Of sodium	CTSH
2837.19	Other	CTSH
2837.20	Complex cyanides	CTSH
2839	Silicates; commercial alkali metal silicates.	
2839.1	Of sodium:	
2839.11	Sodium metasilicates	CTSH
2839.19	Other	CTSH
2839.90	Other	CTSH
2840	Borates; peroxoborates (perborates).	
2840.1	Disodium tetraborate (refined borax):	
2840.11	Anhydrous	CTSH
2840.19	Other	CTSH
2840.20	Other borates	CTSH
2840.30	Peroxoborates (perborates)	CTSH
2841	Salts of oxometallic or peroxometallic acids.	
2841.30	Sodium dichromate	CTSH
2841.50	Other chromates and dichromates; peroxochromates	CTSH
2841.6	Manganites, manganates and permanganates:	
2841.61	Potassium permanganate	CTSH
2841.69	Other	CTSH
2841.70	Molybdates	CTSH
2841.80	Tungstates (wolframates)	CTSH
2841.90	Other	CTSH
2842	Other salts of inorganic acids or peroxoacides (including aluminosilicates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other than azides.	
2842.10	Double or complex silicates, including aluminosilicates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CTSH
2842.90	Other	CTSH
2843	Colloidal precious metals; inorganic or organic compounds of precious metals,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amalgams of precious metals.	
2843.10	Colloidal precious metals	CTSH
2843.2	Silver compounds:	
2843.21	Silver nitrate	CTSH
2843.29	Other	CTSH
2843.30	Gold compounds	CTSH
2843.90	Other compounds; amalgams	CTSH
2844	Radioactive chemical elements and radioactive isotopes (including the fissile or fertile chemical elements and isotopes) and their compounds; mixtures and residues containing these products.	
2844.10	Natural uranium and its compounds; alloys, dispersions (including cermets), ceramic products and mixtures containing natural uranium or natural uranium compounds	CTSH
2844.20	Uranium enriched in U235 and its compounds; plutonium and its compounds; alloys, dispersions (including cermets), ceramic products and mixtures containing uranium enriched in U235, plutonium or compounds of these products	CTSH
2844.30	Uranium depleted in U235 and its compounds; thorium and its compounds; alloys, dispersions (including cermets), ceramic products and mixtures containing uranium depleted in U235, thorium or compounds of these products	CTSH
2844.40	Radioactive elements and isotopes and compounds other than those of subheading 2844.10, 2844.20 or 2844.30; alloys, dispersions (including cermets), ceramic products and mixtures containing these elements, isotopes or compounds; radioactive residues	CTSH
2844.50	Spent (irradiated) fuel elements (cartridges) of nuclear reactors	CTS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2845	Isotope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28.44; compounds, inorganic or organic, of such isotopes,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2845.10	Heavy water (deuterium oxide)	**CTH**
2845.90	Other	**CTH**
2846	Compounds, inorganic or organic, of rare-earth metals, of yttrium or of scandium or of mixtures of these metals.	
2846.10	Cerium compounds	**CTH**
2846.90	Other	**CTH**
2847.00	Hydrogen peroxide, whether or not solidified with urea	**CTH**
2848.00	Phosphides,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excluding ferrophosphorus	**CTH**
2849	Carbides,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2849.10	Of calcium	**CTSH**
2849.20	Of silicon	**CTSH**
2849.90	Other	**CTSH**
2850.00	Hydrides, nitrides, azides, silicides and borides,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other than compounds which are also carbides of heading 28.49	**CTH**
2852.1	Inorganic or organic compounds of mercury,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excluding amalgams.	
2852.10	Chemically defined	**CTH**
2852.90	Other	**CTSH or RVC(40)**
2853.00	Other inorganic compounds (including distilled or conductivity water and water of similar purity); liquid air (whether or not rare gases have been removed); compressed air; amalgams, other than amalgams of precious metals	**CTH**
29	CHAPTER 29 ORGANIC CHEMICALS	
2901	Acyclic hydrocarbons.	
2901.10	Saturated	**CTSH**
2901.2	Unsaturated:	
2901.21	Ethylene	**CTSH**
2901.22	Propene (propylene)	**CTSH**
2901.23	Butene (butylene) and isomers thereof	**CTSH**
2901.24	Buta-1,3-diene and isoprene	**CTSH**
2901.29	Other	**CTSH**
2902	Cyclic hydrocarbons.	
2902.1	Cyclanes, cyclenes and cycloterpenes:	
2902.11	Cyclohexane	**CTSH**
2902.19	Other	**CTSH**
2902.20	Benzene	**CTSH**
2902.30	Toluene	**CTS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2902.4	Xylenes:	
2902.41	o-xylene	**CTSH**
2902.42	m-xylene	**CTSH**
2902.43	p-xylene	**CTSH**
2902.44	Mixed xylene isomers	**CTSH**
2902.50	Styrene	**CTSH**
2902.60	Ethylbenzene	**CTSH**
2902.70	Cumene	**CTSH**
2902.90	Other	**CTSH**
2903	Halogenated derivatives of hydrocarbons.	
2903.1	Saturated chlorinated derivatives of acyclic hydrocarbons:	
2903.11	Chloromethane (methyl chloride) and chloroethane (ethyl chloride)	**CTSH**
2903.12	Dichloromethane (methylene chloride)	**CTSH**
2903.13	Chloroform (trichloromethane)	**CTSH**
2903.14	Carbon tetrachloride	**CTSH**
2903.15	Ethylene dichloride (ISO) (1,2-dichloroethane)	**CTSH**
2903.19	Other	**CTSH**
2903.2	Unsaturated chlorinated derivatives of acyclic hydrocarbons:	
2903.21	Vinyl chloride (chloroethylene)	**CTSH**
2903.22	Trichloroethylene	**CTSH**
2903.23	Tetrachloroethylene (perchloroethylene)	**CTSH**
2903.29	Other	**CTSH**
2903.3	Fluorinated, brominated or iodinated derivatives of acyclic hydrocarbons:	
2903.31	Ethylene dibromide (ISO) (1,2-dibromoethane)	**CTSH**
2903.39	Other	**CTSH**
2903.7	Halogenated derivatives of acyclic hydrocarbons containing two or more different halogens:	
2903.71	Chlorodifluoromethane	**CTSH**
2903.72	Dichlorotrifluoroethanes	**CTSH**
2903.73	Dichlorofluoroethanes	**CTSH**
2903.74	Chlorodifluoroethanes	**CTSH**
2903.75	Dichloropentafluoropropanes	**CTSH**
2903.76	Bromochlorodifluoromethane, bromotrifluoromethane and dibromotetrafluoroethanes	**CTSH**
2903.77	Other, perhalogenated only with fluorine and chlorine	**CTSH or RVC(40)**
2903.78	Other perhalogenated derivatives	**CTSH**
2903.79	Other	**CTSH**
2903.8	Halogenated derivatives of cyclanic, cyclenic or cycloterpenic hydrocarbon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2903.81	1,2,3,4,5,6-Hexachlorocyclohexane (HCH (ISO)), including lindane (ISO, INN)	CTSH
2903.82	Aldrin (ISO), chlordane (ISO) and heptachlor (ISO)	CTSH
2903.89	Other	CTSH
2903.9	Halogenated derivatives of aromatic hydrocarbons:	
2903.91	Chlorobenzene, *o*-dichlorobenzene and *p*-dichlorobenzene	CTSH
2903.92	Hexachlorobenzene (ISO) and DDT (ISO) (clofenotane (INN), 1,1,1-trichloro-2,2-bis(*p*-chlorophenyl)ethane)	CTSH
2903.99	Other	CTSH
2904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of hydrocarbons, whether or not halogenated.	
2904.10	Derivatives containing only sulpho groups, their salts and ethylesters	CTSH
2904.20	Derivatives containing only nitro or only nitroso groups	CTSH
2904.90	Other	CTSH
2905	Acyclic alcohols and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2905.1	Saturated monohydric alcohols:	
2905.11	Methanol (methyl alcohol)	CTSH
2905.12	Propan-1-ol (propyl alcohol) and propan-2-ol (isopropyl alcohol)	CTSH
2905.13	Butan-1-ol (n-butyl alcohol)	CTSH
2905.14	Other butanols	CTSH
2905.16	Octanol (octyl alcohol) and isomers thereof	CTSH
2905.17	Dodecan-1-ol (lauryl alcohol), hexadecan-1-ol (cetyl alcohol) and octadecan-1-ol (stearyl alcohol)	CTSH
2905.19	Other	CTSH
2905.2	Unsaturated monohydric alcohols:	
2905.22	Acyclic terpene alcohols	CTSH
2905.29	Other	CTSH
2905.3	Diols:	
2905.31	Ethylene glycol (ethanediol)	CTSH
2905.32	Propylene glycol (propane-1,2-diol)	CTSH
2905.39	Other	CTSH
2905.4	Other polyhydric alcohols:	
2905.41	2-Ethyl-2-(hydroxymethyl)propane-1,3-diol (trimethylolpropane)	CTSH
2905.42	Pentaerythritol	CTSH
2905.43	Mannitol	CTSH
2905.44	D-glucitol (sorbitol)	CTSH
2905.45	Glycerol	CTSH
2905.49	Other	CTSH
2905.5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of acyclic alcohols:	
2905.51	Ethchlorvynol (INN)	CTSH
2905.59	Other	CTSH
2906	Cyclic alcohols and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2906.1	Cyclanic, cyclenic or cycloterpenic:	
2906.11	Menthol	CTSH
2906.12	Cyclohexanol, methylcyclohexanols and dimethylcyclohexanols	CTSH
2906.13	Sterols and inositols	CTSH
2906.19	Other	CTSH
2906.2	Aromatic:	
2906.21	Benzyl alcohol	CTSH
2906.29	Other	CTSH
2907	Phenols; phenol-alcohols.	
2907.1	Monophenols:	
2907.11	Phenol (hydroxybenzene) and its salts	CTSH
2907.12	Cresols and their salts	CTSH
2907.13	Octylphenol, nonylphenol and their isomers; salts thereof	CTSH
2907.15	Naphthols and their salts	CTSH
2907.19	Other	CTSH
2907.2	Polyphenols; phenol-alcohols:	
2907.21	Resorcinol and its salts	CTSH
2907.22	Hydroquinone (quinol) and its salts	CTSH
2907.23	4,4'-Isopropylidenediphenol (bisphenol A, diphenylolpropane) and its salts	CTSH
2907.29	Other	CTSH
2908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of phenols or phenol-alcohols.	
2908.1	Derivatives containing only halogen substituents and their salts:	
2908.11	Pentachlorophenol (ISO)	CTH
2908.19	Other	CTH
2908.9	Other:	
2908.91	Dinoseb (ISO) and its salts	CTH
2908.92	4,6-Dinitro-*o*-cresol (DNOC (ISO)) and its salts	CTH
2908.99	Other	CTH
2909	Ethers, ether-alcohols, ether-phenols, ether-alcohol-phenols, alcohol peroxides, ether peroxides, ketone peroxides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and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2909.1	Acyclic ethers and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2909.11	Diethyl ether	CTSH
2909.19	Other	CTSH
2909.20	Cyclanic, cyclenic or cycloterpenic ethers and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CTSH
2909.30	Aromatic ethers and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CTSH
2909.4	Ether-alcohols and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2909.41	2,2'-Oxydiethanol (diethylene glycol, digol)	CTSH
2909.43	Monobutyl ethers of ethylene glycol or of diethylene glycol	CTSH
2909.44	Other monoalkylethers of ethylene glycol or of diethylene glycol	CTSH
2909.49	Other	CTSH
2909.50	Ether-phenols, ether-alcohol-phenols and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CTSH
2909.60	Alcohol peroxides, ether peroxides, ketone peroxides and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CTSH
2910	Epoxides, epoxyalcohols, epoxyphenols and epoxyethers, with a three-membered ring, and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2910.10	Oxirane (ethylene oxide)	CTSH
2910.20	Methyloxirane (propylene oxide)	CTSH
2910.30	1-Chloro-2,3-epoxypropane (epichlorohydrin)	CTSH
2910.40	Dieldrin (ISO, INN)	CTSH
2910.90	Other	CTSH
2911.00	Acetals and hemiacetals, whether or not with other oxygen function, and their halogenated, sulp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CTH
2912	Aldehydes, whether or not with other oxygen function; cyclic polymers of aldehydes; paraformaldehyde.	
2912.1	Acyclic aldehydes without other oxygen function:	
2912.11	Methanal (formaldehyde)	CTSH
2912.12	Ethanal (acetaldehyde)	CTSH
2912.19	Other	CTSH
2912.2	Cyclic aldehydes without other oxygen function:	
2912.21	Benzaldehyde	CTSH
2912.29	Other	CTSH
2912.4	Aldehyde-alcohols, aldehyde-ethers, aldehyde-phenols and aldehydes with other oxygen function:	
2912.41	Vanillin (4-hydroxy-3-methoxybenzaldehyde)	CTSH
2912.42	Ethylvanillin (3-ethoxy-4-hydroxybenzaldehyde)	CTSH
2912.49	Other	CTSH
2912.50	Cyclic polymers of aldehydes	CTSH
2912.60	Paraformaldehyde	CTSH
2913.00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of products of heading 29.12	CTH
2914	Ketones and quinones, whether or not with other oxygen function, and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2914.1	Acyclic ketones without other oxygen function:	
2914.11	Acetone	CTSH
2914.12	Butanone (methyl ethyl ketone)	CTSH
2914.13	4-Methylpentan-2-one (methyl isobutyl ketone)	CTSH
2914.19	Other	CTSH
2914.2	Cyclanic, cyclenic or cycloterpenic ketones without other oxygen function:	
2914.22	Cyclohexanone and methylcyclohexanones	CTSH
2914.23	Ionones and methylionones	CTSH
2914.29	Other	CTSH
2914.3	Aromatic ketones without other oxygen function:	
2914.31	Phenylacetone (phenylpropan-2-one)	CTSH
2914.39	Other	CTSH
2914.40	Ketone-alcohols and ketone-aldehydes	CTSH
2914.50	Ketone-phenols and ketones with other oxygen function	CTSH
2914.6	Quinones:	
2914.61	Anthraquinone	CTSH
2914.69	Other	CTSH
2914.70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CTSH
2915	Saturated acyclic monocarboxylic acids and their anhydrides, halides, peroxides and peroxyacids;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2915.1	Formic acid, its salts and esters:	
2915.11	Formic acid	CTSH
2915.12	Salts of formic acid	CTSH
2915.13	Esters of formic acid	CTSH
2915.2	Acetic acid and its salts; acetic anhydride:	
2915.21	Acetic acid	CTSH
2915.24	Acetic anhydride	CTSH
2915.29	Other	CTSH
2915.3	Esters of acetic acid:	
2915.31	Ethyl acetate	CTSH
2915.32	Vinyl acetate	CTSH
2915.33	n-Butyl acetate	CTSH
2915.36	Dinoseb (ISO) acetate	CTSH
2915.39	Other	CTS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2915.40	Mono-, di- or trichloroacetic acids, their salts and esters	CTSH
2915.50	Propionic acid, its salts and esters	CTSH
2915.60	Butanoic acids, pentanoic acids, their salts and esters	CTSH
2915.70	Palmitic acid, stearic acid, their salts and esters	CTSH
2915.90	Other	CTSH
2916	Unsaturated acyclic monocarboxylic acids, cyclic monocarboxylic acids, their anhydrides, halides, peroxides and peroxyacids;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2916.1	Unsaturated acylic monocarboxylic acids, their anhydrides, halides, peroxides, peroxyacids and their derivatives:	
2916.11	Acrylic acid and its salts	CTSH
2916.12	Esters of acrylic acid	CTSH
2916.13	Methacrylic acid and its salts	CTSH
2916.14	Esters of methacrylic acid	CTSH
2916.15	Oleic, linoleic or linolenic acids, their salts and esters	CTSH
2916.16	Binapacryl (ISO)	CTSH
2916.19	Other	CTSH
2916.20	Cyclanic, cyclenic or cycloterpenic monocarboxylic acids, their anhydrides, halides, peroxides, peroxyacids and their derivatives	CTSH
2916.3	Aromatic monocarboxylic acids, their anhydrides, halides, peroxides, peroxyacids and their derivatives:	
2916.31	Benzoic acid, its salts and esters	CTSH
2916.32	Benzoyl peroxide and benzoyl chloride	CTSH
2916.34	Phenylacetic acid and its salts	CTSH
2916.39	Other	CTSH
2917	Polycarboxylic acids, their anhydrides, halides, peroxides and peroxyacids;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2917.1	Acyclic polycarboxylic acids, their anhydrides, halides, peroxides, peroxyacids and their derivatives:	
2917.11	Oxalic acid, its salts and esters	CTSH
2917.12	Adipic acid, its salts and esters	CTSH
2917.13	Azelaic acid, sebacic acid, their salts and esters	CTSH
2917.14	Maleic anhydride	CTSH
2917.19	Other	CTSH
2917.20	Cyclanic, cyclenic or cycloterpenic polycarboxylic acids, their anhydrides, halides, peroxides, peroxyacids and their derivatives	CTSH
2917.3	Aromatic polycarboxylic acids, their anhydrides, halides, peroxides, peroxyacids and their derivatives:	
2917.32	Dioctyl orthophthalates	CTSH
2917.33	Dinonyl or didecyl orthophthalates	CTSH
2917.34	Other esters of orthophthalic acid	CTSH
2917.35	Phthalic anhydride	CTSH
2917.36	Terephthalic acid and its salts	CTSH
2917.37	Dimethyl terephthalate	CTSH
2917.39	Other	CTSH
2918	Carboxylic acids with additional oxygen function and their anhydrides, halides, peroxides and peroxyacids;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2918.1	Carboxylic acids with alcohol function but without other oxygen function, their anhydrides, halides, peroxides, peroxyacids and their derivatives:	
2918.11	Lactic acid, its salts and esters	CTSH
2918.12	Tartaric acid	CTSH
2918.13	Salts and esters of tartaric acid	CTSH
2918.14	Citric acid	CTSH
2918.15	Salts and esters of citric acid	CTSH
2918.16	Gluconic acid, its salts and esters	CTSH
2918.18	Chlorobenzilate (ISO)	CTSH
2918.19	Other	CTSH
2918.2	Carboxylic acids with phenol function but without other oxygen function, their anhydrides, halides, peroxides, peroxyacids and their derivatives:	
2918.21	Salicylic acid and its salts	CTSH
2918.22	O-Acetylsalicylic acid, its salts and esters	CTSH
2918.23	Other esters of salicylic acid and their salts	CTSH
2918.29	Other	CTSH
2918.30	Carboxylic acids with aldehyde or ketone function but without other oxygen function, their anhydrides, halides, peroxides, peroxyacids and their derivatives	CTSH
2918.9	Other:	
2918.91	2,4,5-T (ISO) (2,4,5-trichlorophenoxyacetic acid), its salts and esters	CTSH
2918.99	Other	CTSH
2919	Phosphoric esters and their salts, including lactophosphates;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2919.10	Tris(2,3-dibromopropyl) phosphate	CTH
2919.90	Other	CTH
2920	Esters of other inorganic acids of non-metals (excluding esters of hydrogen halides) and their salts;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2920.1	Thiophosphoric esters (phosphorothioates) and their salts;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2920.11	Parathion (ISO) and parathion-methyl (ISO) (methyl-parathion)	CTSH
2920.19	Other	CTSH
2920.90	Other	CTSH
2921	Amine-function compounds.	
2921.1	Acyclic monoamines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2921.11	Methylamine, di- or trimethylamine and their salts	CTSH
2921.19	Other	CTSH
2921.2	Acyclic polyamines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2921.21	Ethylenediamine and its salts	CTSH
2921.22	Hexamethylenediamine and its salts	CTSH
2921.29	Other	CTSH
2921.30	Cyclanic, cyclenic or cycloterpenic mono- or polyamines,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CTSH
2921.4	Aromatic monoamines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2921.41	Aniline and its salts	CTSH
2921.42	Aniline derivatives and their salts	CTSH
2921.43	Toluidines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CTSH
2921.44	Diphenylamine and its derivatives; salts thereof	CTSH
2921.45	1-Naphthylamine (alpha-naphthylamine), 2-naphthylamine (beta-naphthylamine)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CTSH
2921.46	Amfetamine (INN), benzfetamine (INN), dexamfetamine (INN), etilamfetamine (INN), fencamfamin (INN), lefetamine (INN), levamfetamine (INN), mefenorex (INN) and phentermine (INN); salts thereof	CTSH
2921.49	Other	CTSH
2921.5	Aromatic polyamines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2921.51	o-, m-, p-phenylenediamine, diaminotoluenes,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CTSH
2921.59	Other	CTSH
2922	Oxygen-function amino-compounds.	
2922.1	Amino-alcohols, other than those containing more than one kind of oxygen function, their ethers and esters; salts thereof:	
2922.11	Monoethanolamine and its salts	CTSH
2922.12	Diethanolamine and its salts	CTSH
2922.13	Triethanolamine and its salts	CTSH
2922.14	Dextropropoxyphene (INN) and its salts	CTSH
2922.19	Other	CTSH
2922.2	Amino-naphthols and other amino-phenols, other than those containing more than one kind of oxygen function, their ethers and esters; salts thereof:	
2922.21	Aminohydroxynaphthalenesulphonic acids and their salts	CTSH
2922.29	Other	CTSH
2922.3	Amino-aldehydes, amino-ketones and amino-quinones, other than those containing more than one kind of oxygen function; salts thereof:	
2922.31	Amfepramone (INN), methadone (INN) and normethadone (INN); salts thereof	CTSH
2922.39	Other	CTSH
2922.4	Amino-acids, other than those containing more than one kind of oxygen function, and their esters; salts thereof:	
2922.41	Lysine and its esters; salts thereof	CTSH
2922.42	Glutamic acid and its salts	CTSH
2922.43	Anthranilic acid and its salts	CTSH
2922.44	Tilidine (INN) and its salts	CTSH
2922.49	Other	CTSH
2922.50	Amino-alcohol-phenols, amino-acid-phenols and other amino-compounds with oxygen function	CTSH
2923	Quaternary ammonium salts and hydroxides; lecithins and other phosphoaminolipids,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2923.10	Choline and its salts	CTSH
2923.20	Lecithins and other phosphoaminolipids	CTSH
2923.90	Other	CTSH
2924	Carboxyamide-function compounds; amide-function compounds of carbonic acid.	
2924.1	Acyclic amides (including acyclic carbamates)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2924.11	Meprobamate (INN)	CTSH
2924.12	Fluoroacetamide (ISO), monocrotophos (ISO) and phosphamidon (ISO)	CTSH
2924.19	Other	CTSH
2924.2	Cyclic amides (including cyclic carbamates)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2924.21	Ureines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CTSH
2924.23	2-Acetamidobenzoic acid (N-acetylanthranilic acid) and its salts	CTSH
2924.24	Ethinamate (INN)	CTSH
2924.29	Other	CTSH
2925	Carboxyimide-function compounds (including saccharin and its salts) and imine-function compounds.	
2925.1	Imides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2925.11	Saccharin and its salts	CTSH
2925.12	Glutethimide (INN)	CTSH
2925.19	Other	CTS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2925.2	Imines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2925.21	Chlordimeform (ISO)	CTSH
2925.29	Other	CTSH
2926	Nitrile-function compounds.	
2926.10	Acrylonitrile	CTSH
2926.20	1-Cyanoguanidine (dicyandiamide)	CTSH
2926.30	Fenproporex (INN) and its salts; methadone (INN) intermediate (4-cyano-2-dimethylamino-4,4-diphenylbutane)	CTSH
2926.90	Other	CTSH
2927.00	Diazo-, azo- or azoxy-compounds	CTH
2928.00	Organic derivatives of hydrazine or of hydroxylamine	CTH
2929	Compounds with other nitrogen function.	
2929.10	Isocyanates	CTSH
2929.90	Other	CTSH
2930	Organo-sulphur compounds.	
2930.20	Thiocarbamates and dithiocarbamates	CTSH
2930.30	Thiuram mono-, di- or tetrasulphides	CTSH
2930.40	Methionine	CTSH
2930.50	Captafol (ISO) and methamidophos (ISO)	CTSH
2930.90	Other	CTSH
2931	Other organo-inorganic compounds	
2931.10	Tetramethyl lead and tetraethyl lead	CTH
2931.20	Tributyltin compounds	CTH
2931.90	Other	CTH
2932	Heterocyclic compounds with oxygen hetero-atom(s) only.	
2932.1	Compounds containing an unfused furan ring (whether or not hydrogenated) in the structure:	
2932.11	Tetrahydrofuran	CTSH
2932.12	2-Furaldehyde (furfuraldehyde)	CTSH
2932.13	Furfuryl alcohol and tetrahydrofurfuryl alcohol	CTSH
2932.19	Other	CTSH
2932.20	Lactones	CTSH or RVC(40)
2932.9	Other:	
2932.91	Isosafrole	CTSH
2932.92	1-(1,3-Benzodioxol-5-yl)propane-2-one	CTSH
2932.93	Piperonal	CTSH
2932.94	Safrole	CTSH
2932.95	Tetrahydrocannabinols (all isomers)	CTSH
2932.99	Other	CTSH
2933	Heterocyclic compounds with nitrogen hetero-atom(s) only.	
2933.1	Compounds containing an unfused pyrazole ring (whether or not hydrogenated) in the structure:	
2933.11	Phenazone (antipyrin) and its derivatives	CTSH
2933.19	Other	CTSH
2933.2	Compounds containing an unfused imidazole ring (whether or not hydrogenated) in the structure:	
2933.21	Hydantoin and its derivatives	CTSH
2933.29	Other	CTSH
2933.3	Compounds containing an unfused pyridine ring (whether or not hydrogenated) in the structure:	
2933.31	Pyridine and its salts	CTSH
2933.32	Piperidine and its salts	CTSH
2933.33	Alfentanil (INN), anileridine (INN), bezitramide (INN), bromazepam (INN), difenoxin (INN), diphenoxylate (INN) dipipanone (INN), fentanyl (INN), ketobemidone (INN), methylphenidate (INN), pentazocine (INN), pethidine (INN), pethidine (INN) intermediate A, phencyclidine (INN) (PCP), phenoperidine (INN), pipradrol (INN), piritramide (INN), propiram (INN) and trimeperidine (INN); salts thereof	CTSH
2933.39	Other	CTSH
2933.4	Compounds containing in the structure a quinoline or isoquinoline ring-system (whether or not hydrogenated), not further fused:	
2933.41	Levorphanol (INN) and its salts	CTSH
2933.49	Other	CTSH
2933.5	Compounds containing a pyrimidine ring (whether or not hydrogenated) or piperazine ring in the structure:	
2933.52	Malonylurea (barbituric acid) and its salts	CTSH
2933.53	Allobarbital (INN), amobarbital (INN), barbital (INN), butalbital (INN), butobarbital, cyclobarbital (INN), methylphenobarbital (INN), pentobarbital (INN), phenobarbital (INN), secbutabarbital (INN), secobarbital (INN) and vinylbital (INN); salts thereof	CTSH
2933.54	Other derivatives of malonylurea (barbituric acid); salts thereof	CTSH
2933.55	Loprazolam (INN), mecloqualone (INN), methaqualone (INN) and zipeprol (INN); salts thereof	CTSH
2933.59	Other	CTSH
2933.6	Compounds containing an unfused triazine ring (whether or not hydrogenated) in the structure:	
2933.61	Melamine	CTSH
2933.69	Other	CTSH
2933.7	Lactams:	
2933.71	6-Hexanelactam (epsilon-caprolactam)	CTSH
2933.72	Clobazam (INN) and methyprylon (INN)	CTSH
2933.79	Other lactams	CTSH
2933.9	Other: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2933.91	Alprazolam (INN), camazepam (INN), chlordiazepoxide (INN), clonazepam (INN), clorazepate, delorazepam (INN), diazepam (INN), estazolam (INN), ethyl loflazepate (INN), fludiazepam (INN), flunitrazepam (INN), flurazepam (INN), halazepam (INN), lorazepam (INN), lormetazepam (INN), mazindol (INN), medazepam (INN), midazolam(INN), nimetazepam (INN), nitrazepam (INN), nordazepam (INN), oxazepam (INN), pinazepam (INN), prazepam (INN), pyrovalerone (INN), temazepam (INN) tetrazepam (INN) and triazolam (INN); salts thereof	CTSH
2933.99	Other	CTSH
2934	Nucleic acids and their salts,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other heterocyclic compounds.	
2934.10	Compounds containing an unfused thiazole ring (whether or not hydrogenated) in the structure	CTSH
2934.20	Compounds containing in the structure a benzothiazole ring-system (whether or not hydrogenated), not further fused	CTSH
2934.30	Compounds containing in the structure a phenothiazine ring-system (whether or not hydrogenated), not further fused	CTSH
2934.9	Other:	
2934.91	Aminorex (INN), brotizolam (INN), clotiazepam (INN), cloxazolam (INN), dextromoramide (INN), haloxazolam (INN), ketazolam (INN), mesocarb (INN), oxazolam (INN), pemoline (INN), phendimetrazine (INN), phenmetrazine (INN) and sufentanil (INN); salts thereof	CTSH
2934.99	Other	CTSH
2935.00	Sulphonamides	CTH
2936	Provitamins and vitamins, natural or reproduced by synthesis (including natural concentrates), derivatives thereof used primarily as vitamins, and intermixtures of the foregoing, whether or not in any solvent.	
2936.2	Vitamins and their derivatives, unmixed:	
2936.21	Vitamins A and their derivatives	CTH
2936.22	Vitamin B1 and its derivatives	CTH
2936.23	Vitamin B2 and its derivatives	CTH
2936.24	D- or DL-Pantothenic acid (Vitamin B3 or Vitamin B5) and its derivatives	CTH
2936.25	Vitamin B6 and its derivatives	CTH
2936.26	Vitamin B12 and its derivatives	CTH
2936.27	Vitamin C and its derivatives	CTH
2936.28	Vitamin E and its derivatives	CTH
2936.29	Other vitamins and their derivatives	CTH or RVC(40)
2936.90	Other, including natural concentrates	CTH or RVC(40)
2937	Hormones, prostaglandins, thromboxanes and leukotrienes, natural or reproduced by synthesis; derivatives and structural analogues thereof, including chain modified polypeptides, used primarily as hormones.	
2937.1	Polypeptide hormones, protein hormones and glycoprotein hormones, their derivatives and structural analogues:	
2937.11	Somatotropin, its derivatives and structural analogues	CTH
2937.12	Insulin and its salts	CTH
2937.19	Other	CTH
2937.2	Steroidal hormones, their derivatives and structural analogues:	
2937.21	Cortisone, hydrocortisone, prednisone (dehydrocortisone) and prednisolone (dehydrohydrocortisone)	CTH
2937.22	Halogenated derivatives of corticosteroidal hormones	CTH
2937.23	Oestrogens and progestogens	CTH
2937.29	Other	CTH
2937.50	Prostaglandins, thromboxanes and leukotrienes, their derivatives and structural analogues	CTH
2937.90	Other	CTH
2938	Glycosides, natural or reproduced by synthesis, and their salts, ethers, esters and other derivatives.	
2938.10	Rutoside (rutin) and its derivatives	CTH
2938.90	Other	CTH
2939	Vegetable alkaloids, natural or reproduced by synthesis, and their salts, ethers, esters and other derivatives.	
2939.1	Alkaloids of opium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2939.11	Concentrates of poppy straw; buprenorphine (INN), codeine, dihydrocodeine (INN), ethylmorphine, etorphine (INN), heroin, hydrocodone (INN), hydromorphone (INN), morphine, nicomorphine (INN), oxycodone (INN), oxymorphone (INN), pholcodine (INN), thebacon (INN) and thebaine; salts thereof	CTH
2939.19	Other	CTH
2939.20	Alkaloids of cinchona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CTH
2939.30	Caffeine and its salts	CTH
2939.4	Ephedrines and their salts:	
2939.41	Ephedrine and its salts	CTH
2939.42	Pseudoephedrine (INN) and its salts	CTH
2939.43	Cathine (INN) and its salts	CTH
2939.44	Norephedrine and its salts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2939.49	Other	CTH
2939.5	Theophylline and aminophylline (theophylline-ethylenediamine)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2939.51	Fenetylline (INN) and its salts	CTH
2939.59	Other	CTH
2939.6	Alkaloids of rye ergot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2939.61	Ergometrine (INN) and its salts	CTH
2939.62	Ergotamin (INN) and its salts	CTH
2939.63	Lysergic acid and its salts	CTH
2939.69	Other	CTH
2939.9	Other:	
2939.91	Cocaine, ecgonine, levometamfetamine, metamfetamine (INN), metamfetamine racemate; salts, esters and other derivatives thereof	CTH
2939.99	Other	CTH
2940.00	Sugars, chemically pure, other than sucrose, lactose, maltose, glucose and fructose; sugar ethers, sugar acetals and sugar esters, and their salts, other than products of heading 29.37, 29.38 or 29.39	CTH
2941	Antibiotics.	
2941.10	Penicillins and their derivatives with a penicillanic acid structure; salts thereof	CTH
2941.20	Streptomycins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CTH
2941.30	Tetracyclines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CTH
2941.40	Chloramphenicol and its derivatives; salts thereof	CTH
2941.50	Erythromycin and its derivatives; salts thereof	CTH
2941.90	Other	CTH
2942.00	Other organic compounds	CTH
30	CHAPTER 30 PHARMACEUTICAL PRODUCTS	
3001	Glands and other organs for organo-therapeutic uses, dried, whether or not powdered; extracts of glands or other organs or of their secretions for organo-therapeutic uses; heparin and its salts; other human or animal substances prepared for therapeutic or prophylactic us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3001.20	Extracts of glands or other organs or of their secretions	CTH
3001.90	Other	CTH
3002	Human blood; animal blood prepared for therapeutic, prophylactic or diagnostic uses; antisera, other blood fractions and immunological products, whether or not modified or obtained by means of biotechnological processes; vaccines, toxins, cultures of micro-organisms (excluding yeasts) and similar product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3002.10	Antisera, other blood fractions and immunological products, whether or not modified or obtained by means of biotechnological processes	CTH
3002.20	Vaccines for human medicine	CTH
3002.30	Vaccines for veterinary medicine	CTH
3002.90	Other	CTSH or RVC(40)
3003	Medicaments (excluding goods of heading 30.02, 30.05 or 30.06) consisting of two or more constituents which have been mixed together for therapeutic or prophylactic uses, not put up in measured doses or in forms or packings for retail sale.	
3003.10	Containing penicillines or derivatives thereof, with a penicillanic acid structure, or streptomycins or their derivatives	CTH
3003.20	Containing other antibiotics	CTH
3003.3	Containing hormones or other products of heading 29.37 but not containing antibiotics:	
3003.31	Containing insulin	CTH
3003.39	Other	CTH
3003.40	Containing alkaloids or derivatives thereof but not containing hormones or other products of heading 29.37 or antibiotics	CTH
3003.90	Other	CTH
3004	Medicaments (excluding goods of heading 30.02, 30.05 or 30.06) consisting of mixed or unmixed products for therapeutic or prophylactic uses, put up in measured doses (including those in the form of transdermal administration systems) or in forms or packings for retail sale.	
3004.10	Containing penicillins or derivatives thereof, with a penicillanic acid structure, or streptomycins or their derivatives	CTH except from heading 3003
3004.20	Containing other antibiotics	CTH except from heading 3003
3004.3	Containing hormones or other products of heading 29.37 but not containing antibiotics:	
3004.31	Containing insulin	CTH except from heading 3003
3004.32	Containing corticosteroid hormones, their derivatives or structural analogues	CTH except from heading 3003
3004.39	Other	CTH except from heading 3003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3004.40	Containing alkaloids or derivatives thereof but not containing hormones, other products of heading 29.37 or antibiotics	**CTH except from heading 3003**
3004.50	Other medicaments containing vitamins or other products of heading 29.36	**CTH except from heading 3003**
3004.90	Other	**CTH except from heading 3003**
3005	Wadding, gauze, bandages and similar articles (for example, dressings, adhesive plasters, poultices), impregnated or coated with pharmaceutical substances or put up in forms or packings for retail sale for medical, surgical, dental or veterinary purposes.	
3005.10	Adhesive dressings and other articles having an adhesive layer	**CTH**
3005.90	Other	**CTH**
3006	Pharmaceutical goods specified in Note 4 to this Chapter.	
3006.10	Sterile surgical catgut, similar sterile suture materials (including sterile absorbable surgical or dental yarns) and sterile tissue adhesives for surgical wound closure; sterile laminaria and sterile laminaria tents; sterile absorbable surgical or dental haemostatics; sterile surgical or dental adhesion barriers, whether or not absorbable	**CTH**
3006.20	Blood-grouping reagents	**CTH**
3006.30	Opacifying preparations for X-ray examinations; diagnostic reagents designed to be administered to the patient	**CTH**
3006.40	Dental cements and other dental fillings; bone reconstruction cements	**CTH**
3006.50	First-aid boxes and kits	**CTH**
3006.60	Chemical contraceptive preparations based on hormones, on other products of heading 29.37 or on spermicides	**CTH**
3006.70	Gel preparations designed to be used in human or veterinary medicine as a lubricant for parts of the body for surgical operations or physical examinations or as a coupling agent between the body and medical instruments	**CTH**
3006.9	Other:	
3006.91	Appliances identifiable for ostomy use	**CTH**
3006.92	Waste pharmaceuticals	**CTH**
31	CHAPTER 31 FERTILISERS	
3101.00	Animal or vegetable fertilisers, whether or not mixed together or chemically treated; fertilisers produced by the mixing or chemical treatment of animal or vegetable products	**CTH**
3102	Mineral or chemical fertilisers, nitrogenous.	
3102.10	Urea, whether or not in aqueous solution	**CTH or RVC(40)**
3102.2	Ammonium sulphate; double salts and mixtures of ammonium sulphate and ammonium nitrate:	
3102.21	Ammonium sulphate	**CTH or RVC(40)**
3102.29	Other	**CTH or RVC(40)**
3102.30	Ammonium nitrate, whether or not in aqueous solution	**CTH or RVC(40)**
3102.40	Mixtures of ammonium nitrate with calcium carbonate or other inorganic non-fertilising substances	**CTH or RVC(40)**
3102.50	Sodium nitrate	**CTH or RVC(40)**
3102.60	Double salts and mixtures of calcium nitrate and ammonium nitrate	**CTH or RVC(40)**
3102.80	Mixtures of urea and ammonium nitrate in aqueous or ammoniacal solution	**CTH or RVC(40)**
3102.90	Other, including mixtures not specified in the foregoing subheadings	**CTH or RVC(40)**
3103	Mineral or chemical fertilisers, phosphatic.	
3103.10	Superphosphates	**CTH or RVC(40)**
3103.90	Other	**CTH or RVC(40)**
3104	Mineral or chemical fertilisers, potassic.	
3104.20	Potassium chloride	**CTH or RVC(40)**
3104.30	Potassium sulphate	**CTH or RVC(40)**
3104.90	Other	**CTH or RVC(40)**
3105	Mineral or chemical fertilisers containing two or three of the fertilising elements nitrogen, phosphorus and potassium; other fertilisers; goods of this Chapter in tablets or similar forms or in packages of a gross weight not exceeding 10 kg.	
3105.10	Goods of the this Chapter in tablets or similar forms or in packages of a gross weight not exceeding 10 kg	**CTH or RVC(40)**
3105.20	Mineral or chemical fertilisers containing the three fertilising elements nitrogen, phosphorus and potassium	**CTH or RVC(40)**
3105.30	Diammonium hydrogenorthophosphate (diammonium phosphate)	**CT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3105.40	Ammonium dihydrogenorthophosphate (monoammonium phosphate) and mixtures thereof with diammonium hydrogenorthophosphate (diammonium phosphate)	**CTH or RVC(40)**
3105.5	Other mineral or chemical fertilisers containing the two fertilising elements nitrogen and phosphorus:	
3105.51	Containing nitrates and phosphates	**CTH or RVC(40)**
3105.59	Other	**CTH or RVC(40)**
3105.60	Mineral or chemical fertilisers containing the two fertilising elements phosphorus and potassium	**CTH or RVC(40)**
3105.90	Other	**CTH or RVC(40)**
32	CHAPTER 32 TANNING OR DYEING EXTRACTS; TANNINS AND THEIR DERIVATIVES; DYES, PIGMENTS AND OTHER COLOURING MATTER; PAINTS AND VARNISHES; PUTTY AND OTHER MASTICS; INKS	
3201	Tanning extracts of vegetable origin; tannins and their salts, ethers, esters and other derivatives.	
3201.10	Quebracho extract	**CTSH or RVC(40)**
3201.20	Wattle extract	**CTSH or RVC(40)**
3201.90	Other	**CTSH or RVC(40)**
3202	Synthetic organic tanning substances; inorganic tanning substances; tanning preparations, whether or not containing natural tanning substances; enzymatic preparations for pre-tanning.	
3202.10	Synthetic organic tanning substances	**CTSH or RVC(40)**
3202.90	Other	**CTSH or RVC(40)**
3203.00	Colouring matter of vegetable or animal origin (including dyeing extracts but excluding animal black),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preparations as specified in Note 3 to this Chapter based on colouring matter of vegetable or animal origin	**CTSH or RVC(40)**
3204	Synthetic organic colouring matter,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preparations as specified in Note 3 to this Chapter based on synthetic organic colouring matter; synthetic organic products of a kind used as fluorescent brightening agents or as luminophores,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3204.1	Synthetic organic colouring matter and preparations based thereon as specified in Note 3 to this Chapter:	
3204.11	Disperse dyes and preparations based thereon	**CTSH or RVC(40)**
3204.12	Acid dyes, whether or not premetallised, and preparations based thereon; mordant dyes and preparations based thereon	**CTSH or RVC(40)**
3204.13	Basic dyes and preparations based thereon	**CTSH or RVC(40)**
3204.14	Direct dyes and preparations based thereon	**CTSH or RVC(40)**
3204.15	Vat dyes (including those usable in that state as pigments) and preparations based thereon	**CTSH or RVC(40)**
3204.16	Reactive dyes and preparations based thereon	**CTSH or RVC(40)**
3204.17	Pigments and preparations based thereon	**CTSH or RVC(40)**
3204.19	Other, including mixtures of colouring matter of two or more of the subheadings 3204.11 to 3204.19	**CTSH except from subheadings 3204.11 to 3204.17, or RVC(40)**
3204.20	Synthetic organic products of a kind used as fluorescent brightening agents	**CTSH or RVC(40)**
3204.90	Other	**CTSH or RVC(40)**
3205.00	Colour lakes; preparations as specified in Note 3 to this Chapter based on colour lakes.	**CTH or RVC(40)**
3206	Other colouring matter; preparations as specified in Note 3 to this Chapter, other than those of heading 32.03, 32.04 or 32.05; inorganic products of a kind used as luminophores,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3206.1	Pigments and preparations based on titanium dioxide:	
3206.11	Containing 80 % or more by weight of titanium dioxide calculated on the dry matter	**CTSH except from subheading 3206.19, or RVC(40)**
3206.19	Other	**CTSH except from subheading 3206.11, or RVC(40)**
3206.20	Pigments and preparations based on chromium compounds	**CTSH or RVC(40)**
3206.4	Other colouring matter and other preparations:	
3206.41	Ultramarine and preparations based thereon	**CTSH or RVC(40)**
3206.42	Lithopone and other pigments and preparations based on zinc sulphide	**CTS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3206.49	Other	CTSH or RVC(40)
3206.50	Inorganic products of a kind used as luminophores	CTSH or RVC(40)
3207	Prepared pigments, prepared opacifiers and prepared colours, vitrifiable enamels and glazes, engobes (slips), liquid lustres and similar preparations, of a kind used in the ceramic, enamelling or glass industry; glass frit and other glass, in the form of powder, granules or flakes.	
3207.10	Prepared pigments, prepared opacifiers, prepared colours and similar preparations	CTSH or RVC(40)
3207.20	Vitrifiable enamels and glazes, engobes (slips) and similar preparations	CTSH or RVC(40)
3207.30	Liquid lustres and similar preparations	CTSH or RVC(40)
3207.40	Glass frit and other glass, in the form of powder, granules or flakes	CTSH or RVC(40)
3208	Paints and varnishes (including enamels and lacquers) based on synthetic polymers or chemically modified natural polymers, dispersed or dissolved in a non-aqueous medium; solutions as defined in Note 4 to this Chapter.	
3208.10	Based on polyesters	CTSH or RVC(40)
3208.20	Based on acrylic or vinyl polymers	CTSH or RVC(40)
3208.90	Other	CTSH or RVC(40)
3209	Paints and varnishes (including enamels and lacquers) based on synthetic polymers or chemically modified natural polymers, dispersed or dissolved in an aqueous medium.	
3209.10	Based on acrylic or vinyl polymers	CTSH or RVC(40)
3209.90	Other	CTSH or RVC(40)
3210.00	Other paints and varnishes (including enamels, lacquers and distempers); prepared water pigments of a kind used for finishing leather.	CTH
3211.00	Prepared driers.	CTH
3212	Pigments (including metallic powders and flakes) dispersed in non-aqueous media, in liquid or paste form, of a kind used in the manufacture of paints (including enamels); stamping foils; dyes and other colouring matter put up in forms or packings for retail sale.	
3212.10	Stamping foils	CTSH or RVC(40)
3212.90	Other	CTSH or RVC(40)
3213	Artists', students' or signboard painters' colours, modifying tints, amusement colours and the like, in tablets, tubes, jars, bottles, pans or in similar forms or packings.	
3213.10	Colours in sets	CTH
3213.90	Other	CTH
3214	Glaziers' putty, grafting putty, resin cements, caulking compounds and other mastics; painters' fillings; non-refractory surfacing preparations for facades, indoor walls, floors, ceilings or the like.	
3214.10	Glaziers' putty, grafting putty, resin cements, caulking compounds and other mastics; painters' fillings	CTSH or RVC(40)
3214.90	Other	CTSH or RVC(40)
3215	Printing ink, writing or drawing ink and other inks, whether or not concentrated or solid.	
3215.1	Printing ink:	
3215.11	Black	CTH or RVC(40)
3215.19	Other	CTH or RVC(40)
3215.90	Other	CTH
33	CHAPTER 33 ESSENTIAL OILS AND RESINOIDS; PERFUMERY, COSMETIC OR TOILET PREPARATIONS	
3301	Essential oils (terpeneless or not), including concretes and absolutes; resinoids; extracted oleoresins; concentrates of essential oils in fats, in fixed oils, in waxes or the like, obtained by enfleurage or maceration; terpenic by-products of the deterpenation of essential oils; aqueous distillates and aqueous solutions of essential oils.	
3301.1	Essential oils of citrus fruit:	
3301.12	Of orange	CTSH
3301.13	Of lemon	CTSH
3301.19	Other	CTSH
3301.2	Essential oils other than those of citrus fruit:	
3301.24	Of peppermint (*Mentha piperita*)	CTSH
3301.25	Of other mints	CTSH
3301.29	Other	CTSH
3301.30	Resinoids	CTSH
3301.90	Other	CTS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3302	Mixtures of odoriferous substances and mixtures (including alcoholic solutions) with a basis of one or more of these substances, of a kind used as raw materials in industry; other preparations based on odoriferous substances, of a kind used for the manufacture of beverages.	
3302.10	Of a kind used in the food or drink industries	CTH
3302.90	Other	CTH
3303.00	Perfumes and toilet waters.	CTH
3304	Beauty or make-up preparations and preparations for the care of the skin (other than medicaments), including sunscreen or sun tan preparations; manicure or pedicure preparations.	
3304.10	Lip make-up preparations	CTH
3304.20	Eye make-up preparations	CTH
3304.30	Manicure or pedicure preparations	CTH
3304.9	Other:	
3304.91	Powders, whether or not compressed	CTH
3304.99	Other	CTH
3305	Preparations for use on the hair.	
3305.10	Shampoos	CTH
3305.20	Preparations for permanent waving or straightening	CTH
3305.30	Hair lacquers	CTH
3305.90	Other	CTH
3306	Preparations for oral or dental hygiene, including denture fixative pastes and powders; yarn used to clean between the teeth (dental floss), in individual retail packages.	
3306.10	Dentifrices	CTH
3306.20	Yarn used to clean between the teeth (dental floss)	CTH except from chapter 54, or RVC(40)
3306.90	Other	CTH
3307	Pre-shave, shaving or after-shave preparations, personal deodorants, bath preparations, depilatories and other perfumery, cosmetic or toilet preparation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prepared room deodorisers, whether or not perfumed or having disinfectant properties.	
3307.10	Pre-shave, shaving or after-shave preparations	CTH
3307.20	Personal deodorants and antiperspirants	CTH
3307.30	Perfumed bath salts and other bath preparations	CTH
3307.4	Preparations for perfuming or deodorizing rooms, including odoriferous preparations used during religious rites:	
3307.41	"Agarbatti" and other odoriferous preparations which operate by burning	CTH
3307.49	Other	CTH
3307.90	Other	CTH
34	CHAPTER 34 SOAP, ORGANIC SURFACE-ACTIVE AGENTS, WASHING PREPARATIONS, LUBRICATING PREPARATIONS, ARTIFICIAL WAXES, PREPARED WAXES, POLISHING OR SCOURING PREPARATIONS, CANDLES AND SIMILAR ARTICLES, MODELLING PASTES, "DENTAL WAXES" AND DENTAL PREPARATIONS WITH A BASIS OF PLASTER	
3401	Soap; organic surface-active products and preparations for use as soap, in the form of bars, cakes, moulded pieces or shapes, whether or not containing soap; organic surface-active products and 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in the form of liquid or cream and put up for retail sale, whether or not containing soap; paper, wadding, felt and nonwovens, impregnated, coated or covered with soap or detergent.	
3401.1	Soap and organic surface-active products and preparations, in the form of bars, cakes, moulded pieces or shapes, and paper, wadding, felt and nonwovens, impregnated, coated or covered with soap or detergent:	
3401.11	For toilet use (including medicated products)	CTH
3401.19	Other	CTH
3401.20	Soap in other forms	CTH
3401.30	Organic surface-active products and 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in the form of liquid or cream and put up for retail sale, whether or not containing soap	CTH
3402	Organic surface-active agents (other than soap); surface-active preparations, washing preparations (including auxiliary washing preparations) and cleaning preparations, whether or not containing soap, other than those of heading 34.01.	
3402.1	Organic surface-active agents, whether or not put up for retail sale:	
3402.11	Anionic	CTH
3402.12	Cationic	CTH
3402.13	Non-ionic	CTH
3402.19	Other	CTH
3402.20	Preparations put up for retail sale	CTH
3402.90	Other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3403	Lubricating preparations (including cutting-oil preparations, bolt or nut release preparations, anti-rust or anti-corrosion preparations and mould release preparations, based on lubricants) and preparations of a kind used for the oil or grease treatment of textile materials, leather, furskins or other materials, but excluding preparations containing, as basic constituents, 70 % or more by weight of petroleum oils or of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3403.1	Containing petroleum oils or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3403.11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textile materials, leather, furskins or other materials	**CTH**
3403.19	Other	**CTH**
3403.9	Other:	
3403.91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textile materials, leather, furskins or other materials	**CTH**
3403.99	Other	**CTH**
3404	Artificial waxes and prepared waxes.	
3404.20	Of poly(oxyethylene) (polyethylene glycol)	**CTH or RVC(40)**
3404.90	Other	**CTH or RVC(40)**
3405	Polishes and creams, for footwear, furniture, floors, coachwork, glass or metal, scouring pastes and powders and similar preparations (whether or not in the form of paper, wadding, felt, nonwovens, cellular plastics or cellular rubber, impregnated, coated or covered with such preparations), excluding waxes of heading 34.04.	
3405.10	Polishes, creams and similar preparations for footwear or leather	**CTSH**
3405.20	Polishes, creams and similar prepar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wooden furniture, floors or other woodwork	**CTSH**
3405.30	Polishes and similar preparations for coachwork, other than metal polishes	**CTSH**
3405.40	Scouring pastes and powders and other scouring preparations	**CTSH**
3405.90	Other	**CTSH**
3406.00	Candles, tapers and the like.	**CTH**
3407.00	Modelling pastes, including those put up for children's amusement; preparations known as "dental wax" or as "dental impression compounds", put up in sets, in packings for retail sale or in plates, horseshoe shapes, sticks or similar forms; other preparations for use in dentistry, with a basis of plaster (of calcined gypsum or calcium sulphate).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35	CHAPTER 35 ALBUMINOIDAL SUBSTANCES; MODIFIED STARCHES; GLUES; ENZYMES	
3501	Casein, caseinates and other casein derivatives; casein glues.	
3501.10	Casein	**CTSH**
3501.90	Other	**CTSH**
3502	Albumins (including concentrates of two or more whey proteins, containing by weight more than 80 % whey proteins, calculated on the dry matter), albuminates and other albumin derivatives.	
3502.1	Egg albumin:	
3502.11	Dried	**CTSH**
3502.19	Other	**CTSH**
3502.20	Milk albumin, including concentrates of two or more whey proteins	**CTSH**
3502.90	Other	**CTSH**
3503.00	Gelatin (including gelatin in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whether or not surface-worked or coloured) and gelatin derivatives; isinglass; other glues of animal origin, excluding casein glues of heading 35.01.	**CTH**
3504.00	Peptones and their derivatives; other protein substances and their derivativ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hide powder, whether or not chromed.	**CTH**
3505	Dextrins and other modified starches (for example, pregelatinised or esterified starches); glues based on starches, or on dextrins or other modified starches.	
3505.10	Dextrins and other modified starches	**CTSH**
3505.20	Glues	**CTSH**
3506	Prepared glues and other prepared adhesiv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products suitable for use as glues or adhesives, put up for retail sale as glues or adhesives, not exceeding a net weight of 1 kg.	
3506.10	Products suitable for use as glues or adhesives, put up for retail sale as glues or adhesives, not exceeding a net weight of 1 kg	**CTH except from heading 3503 or subheading 3501.90**
3506.9	Other:	
3506.91	Adhesives based on polymers of headings 39.01 to 39.13 or on rubber	**CTH**
3506.99	Other	**CTH**
3507	Enzymes; prepared enzym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3507.10	Rennet and concentrates thereof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3507.90	Other	CTH
36	CHAPTER 36 EXPLOSIVES; PYROTECHNIC PRODUCTS; MATCHES; PYROPHORIC ALLOYS; CERTAIN COMBUSTIBLE PREPARATIONS	
3601.00	Propellent powders.	CTH
3602.00	Prepared explosives, other than propellent powders.	CTH
3603.00	Safety fuses; detonating fuses; percussion or detonating caps; igniters; electric detonators.	CTH
3604	Fireworks, signalling flares, rain rockets, fog signals and other pyrotechnic articles.	
3604.10	Fireworks	CTH
3604.90	Other	CTH
3605.00	Matches, other than pyrotechnic articles of heading 36.04.	CTH
3606	Ferro-cerium and other pyrophoric alloys in all forms; articles of combustible materials as specified in Note 2 to this Chapter.	
3606.10	Liquid or liquefied-gas fuels in containers of a kind used for filling or refilling cigarette or similar lighters and of a capacity not exceeding 300 ㎤	CTH
3606.90	Other	CTH
37	CHAPTER 37 PHOTOGRAPHIC OR CINEMATOGRAPHIC GOODS	
3701	Photographic plates and film in the flat, sensitised, unexposed, of any material other than paper, paperboard or textiles; instant print film in the flat, sensitised, unexposed, whether or not in packs.	
3701.10	For X-ray	CTH except from headings 3702 or 3703
3701.20	Instant print film	CTH except from headings 3702 or 3703
3701.30	Other plates and film, with any side exceeding 255 ㎜	CTH except from headings 3702 or 3703
3701.9	Other:	
3701.91	For colour photography (polychrome)	CTH except from headings 3702 or 3703
3701.99	Other	CTH except from headings 3702 or 3703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3702	Photographic film in rolls, sensitised, unexposed, of any material other than paper, paperboard or textiles; instant print film in rolls, sensitised, unexposed.	
3702.10	For X-ray	CTH except from headings 3701 or 3703
3702.3	Other film, without perforations, of a width not exceeding 105 ㎜:	
3702.31	For colour photography (polychrome)	CTH except from headings 3701 or 3703
3702.32	Other, with silver halide emulsion	CTH except from headings 3701 or 3703
3702.39	Other	CTH except from headings 3701 or 3703
3702.4	Other film, without perforations, of a width exceeding 105 ㎜:	
3702.41	Of a width exceeding 610 ㎜ and of a length exceeding 200 m, for colour photography (polychrome)	CTH except from headings 3701 or 3703
3702.42	Of a width exceeding 610 ㎜ and of a length exceeding 200 m, other than for colour photography	CTH except from headings 3701 or 3703
3702.43	Of a width exceeding 610 ㎜ and of a length not exceeding 200 m	CTH except from headings 3701 or 3703
3702.44	Of a width exceeding 105 ㎜ but not exceeding 610 ㎜	CTH except from headings 3701 or 3703
3702.5	Other film, for colour photography (polychrome):	
3702.52	Of a width not exceeding 16 ㎜	CTH except from headings 3701 or 3703
3702.53	Of a width exceeding 16 ㎜ but not exceeding 35 ㎜ and of a length not exceeding 30 m, for slides	CTH except from headings 3701 or 3703
3702.54	Of a width exceeding 16 ㎜ but not exceeding 35 ㎜ and of a length not exceeding 30 m, other than for sliders	CTH except from headings 3701 or 3703
3702.55	Of a width exceeding 16 ㎜ but not exceeding 35 ㎜ and of a length exceeding 30 m	CTH except from headings 3701 or 3703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3702.56	Of a width exceeding 35 ㎜	CTH except from headings 3701 or 3703
3702.9	Other:	
3702.96	Of a width not exceeding 35 mm and of a length not exceeding 30 m	CTH except from headings 3701 or 3703
3702.97	Of a width not exceeding 35 mm and of a length exceeding 30 m	CTH except from headings 3701 or 3703
3702.98	Of a width exceeding 35 mm	CTH except from headings 3701 or 3703
3703	Photographic paper, paperboard and textiles, sensitised, unexposed.	
3703.10	In rolls of a width exceeding 610 ㎜	CTH except from headings 3701 or 3702
3703.20	Other, for colour photography (polychrome)	CTH except from headings 3701 or 3702
3703.90	Other	CTH except from headings 3701 or 3702
3704.00	Photographic plates, film, paper, paperboard and textiles, exposed but not developed.	CTH
3705	Photographic plates and film, exposed and developed, other than cinematographic film.	
3705.10	For offset reproduction	CTH
3705.90	Other	CTH
3706	Cinematographic film, exposed and developed,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sound track or consisting only of sound track.	
3706.10	Of a width of 35 ㎜ or more	CTH
3706.90	Other	CTH
3707	Chemical preparations for photographic uses (other than varnishes, glues, adhesives and similar preparations); unmixed products for photographic uses, put up in measured portions or put up for retail sale in a form ready for use.	
3707.10	Sensitising emulsions	CTSH
3707.90	Other	CTSH
38	CHAPTER 38 MISCELLANEOUS CHEMICAL PRODUCT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3801	Artificial graphite; colloidal or semi-colloidal graphite; preparations based on graphite or other carbon in the form of pastes, blocks, plates or other semi-manufactures.	
3801.10	Artificial graphite	CTSH
3801.20	Colloidal or semi-colloidal graphite	CTSH
3801.30	Carbonaceous pastes for electrodes and similar pastes for furnace linings	CTSH
3801.90	Other	CTSH
3802	Activated carbon; activated natural mineral products; animal black, including spent animal black.	
3802.10	Activated carbon	CTH
3802.90	Other	CTH
3803.00	Tall oil, whether or not refined.	CTH
3804.00	Residual lyes from the manufacture of wood pulp, whether or not concentrated, desugared or chemically treated, including lignin sulphonates, but excluding tall oil of heading 38.03.	CTH
3805	Gum, wood or sulphate turpentine and other terpenic oils produced by the distillation or other treatment of coniferous woods; crude dipentene; sulphite turpentine and other crude para-cymene; pine oil containing alpha-terpineol as the main constituent.	
3805.10	Gum, wood or sulphate turpentine oils	CTH
3805.90	Other	CTH
3806	Rosin and resin acids, and derivatives thereof; rosin spirit and rosin oils; run gums.	
3806.10	Rosin and resin acids	CTSH
3806.20	Salts of rosin, of resin acids or of derivatives of rosin or resin acids, other than salts of rosin adducts	CTSH
3806.30	Ester gums	CTSH
3806.90	Other	CTSH
3807.00	Wood tar; wood tar oils; wood creosote; wood naphtha; vegetable pitch; brewers' pitch and similar preparations based on rosin, resin acids or on vegetable pitch.	CTH
3808	Insecticides, rodenticides, fungicides, herbicides, anti-sprouting products and plant-growth regulators, disinfectants and similar products, put up in forms or packings for retail sale or as preparations or articles (for example, sulphur-treated bands, wicks and candles, and fly-paper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3808.50	Goods specified in Subheading Note 1 to this Chapter	**CTSH provided that at least 50 per cent by weight of the active ingredient/s are originating; or RVC(40)**
3808.9	Other:	
3808.91	Insecticides	**CTSH provided that at least 50 per cent by weight of the active ingredient/s are originating**
3808.92	Fungicides	**CTSH provided that at least 50 per cent by weight of the active ingredient/s are originating**
3808.93	Herbicides, anti-sprouting products and plant-growth regulators	**CTSH provided that at least 50 per cent by weight of the active ingredient/s are originating**
3808.94	Disinfectants	**CTSH provided that at least 50 per cent by weight of the active ingredient/s are originating**
3808.99	Other	**CTSH provided that at least 50 per cent by weight of the active ingredient/s are originating**
3809	Finishing agents, dye carriers to accelerate the dyeing or fixing of dyestuffs and other products and preparations (for example, dressings and mordants), of a kind used in the textile, paper, leather or like industri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3809.10	With a basis of amylaceous substances	**CTH**
3809.9	Other:	
3809.91	Of a kind used in the textile or like industries	**CTH**
3809.92	Of a kind used in the paper or like industries	**CTH**
3809.93	Of a kind used in the leather or like industries	**CTH**
3810	Pickling preparations for metal surfaces; fluxes and other auxiliary preparations for soldering, brazing or welding; soldering, brazing or welding powders and pastes consisting of metal and other materials; preparations of a kind used as cores or coatings for welding electrodes or rods.	
3810.10	Pickling preparations for metal surfaces; soldering, brazing or welding powders and pastes consisting of metal and other materials	**CTH**
3810.90	Other	**CTH**
3811	Anti-knock preparations, oxidation inhibitors, gum inhibitors, viscosity improvers, anti-corrosive preparations and other prepared additives, for mineral oils (including gasoline) or for other liquids used for the same purposes as mineral oils.	
3811.1	Anti-knock preparations:	
3811.11	Based on lead compounds	**CTH**
3811.19	Other	**CTH**
3811.2	Additives for lubricating oils:	
3811.21	Containing petroleum oils or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CTH**
3811.29	Other	**CTH**
3811.90	Other	**CTH**
3812	Prepared rubber accelerators; compound plasticisers for rubber or plastic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anti-oxidising preparations and other compound stabilisers for rubber or plastic.	
3812.10	Prepared rubber accelerators	**CTH**
3812.20	Compound plasticisers for rubber or plastics	**CTH**
3812.30	Anti-oxidising preparations and other compound stabilisers for rubber or plastics	**CTH**
3813.00	Preparations and charges for fire-extinguishers; charged fire-extinguishing grenades.	**CTH**
3814.00	Organic composite solvents and thinner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prepared paint or varnish removers.	**CTH**
3815	Reaction initiators, reaction accelerators and catalytic preparation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3815.1	Supported catalysts:	
3815.11	With nickel or nickel compounds as the active substance	**CTH**
3815.12	With precious metal or precious metal compounds as the active substance	**CTH**
3815.19	Other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3815.90	Other	CTH
3816.00	Refractory cements, mortars, concretes and similar compositions, other than products of heading 38.01.	CTH
3817.00	Mixed alkylbenzenes and mixed alkylnaphthalene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2707 or 2902.	CTH or RVC(40)
3818.00	Chemical elements doped for use in electronics, in the form of discs, wafers or similar forms; chemical compounds doped for use in electronics.	CTH
3819.00	Hydraulic brake fluids and other prepared liquids for hydraulic transmission, not containing or containing less than 70 % by weight of petroleum oils or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CTH
3820.00	Anti-freezing preparations and prepared de-icing fluids.	CTH
3821.00	Prepared culture media for the development or maintenance of micro-organisms (including viruses and the like) or of plant, human or animal cells.	CTH
3822.00	Diagnostic or laboratory reagents on a backing, prepared diagnostic or laboratory reagents whether or not on a backing, other than those of heading 30.02 or 30.06;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CTH
3823	Industrial monocarboxylic fatty acids; acid oils from refining; industrial fatty alcohols.	
3823.1	Industrial monocarboxylic fatty acids; acid oils from refining:	
3823.11	Stearic acid	CTSH
3823.12	Oleic acid	CTSH
3823.13	Tall oil fatty acids	CTSH
3823.19	Other	CTSH
3823.70	Industrial fatty alcohols	CTSH
3824	Prepared binders for foundry moulds or cores; chemical products and preparations of the chemical or allied industries (including those consisting of mixtures of natural product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3824.10	Prepared binders for foundry moulds or cores	CTSH
3824.30	Non-agglomerated metal carbides mixed together or with metallic binders	CTSH
3824.40	Prepared additives for cements, mortars or concretes	CTSH
3824.50	Non-refractory mortars and concretes	CTSH
3824.60	Sorbitol other than that of subheading 2905.44	CTSH
3824.7	Mixtures containing halogenated derivatives of methane, ethane or propane:	
3824.71	Containing chlorofluorocarbons (CFCs), whether or not containing hydrochlorofluorocarbons (HCFCs), perfluorocarbons (PFCs) or hydrofluorocarbons (HFCs)	CTSH
3824.72	Containing bromochlorodifluoromethane, bromotrifluoromethane or dibromotetrafluoroethanes	CTSH
3824.73	Containing hydrobromofluorocarbons (HBFCs)	CTSH
3824.74	Containing hydrochlorofluorocarbons (HCFCs), whether or not containing perfluorocarbons (PFCs) or hydrofluorocarbons (HFCs), but not containing chlorofluorocarbons (CFCs)	CTSH
3824.75	Containing carbon tetrachloride	CTSH
3824.76	Containing 1,1,1-trichloroethane (methyl chloroform)	CTSH
3824.77	Containing bromomethane (methyl bromide) or bromochloromethane	CTSH
3824.78	Containing perfluorocarbons (PFCs) or hydrofluorocarbons (HFCs), but not containing chlorofluorocarbons (CFCs) or hydrochlorofluorocarbons (HCFCs)	CTSH
3824.79	Other	CTSH
3824.8	Mixtures and preparations containing oxirane (ethylene oxide), polybrominated biphenyls (PBBs),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polychlorinated terphenyls (PCTs) or tris(2,3-dibromopropyl) phosphate:	
3824.81	Containing oxirane (ethylene oxide)	CTSH
3824.82	Containing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polychlorinated terphenyls (PCTs) or polybrominated biphenyls (PBBs)	CTSH
3824.83	Containing tris (2,3-dibromopropyl) phosphate	CTSH
3824.90	Other	CTSH
3825	Residual products of the chemical or allied industri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municipal waste; sewage sludge; other wastes specified in Note 6 to this Chapter.	
3825.10	Municipal waste	CTH
3825.20	Sewage sludge	CTH
3825.30	Clinical waste	CTH
3825.4	Waste organic solvents:	
3825.41	Halogenated	CTH
3825.49	Other	CTH
3825.50	Wastes of metal pickling liquors, hydraulic fluids, brake fluids and anti-freeze fluids	CTH
3825.6	Other wastes from chemical or allied industries:	
3825.61	Mainly containing organic constituents	CTH
3825.69	Other	CTH
3825.90	Other	CTH
3826.00	Biodiesel and mixture thereof, not containing or containing less than 70 % by weight of petroleum oils or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CTS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39	CHAPTER 39 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3901	Polymers of ethylene, in primary forms.	
3901.10	Polyethylene having a specific gravity of less than 0.94	**CTH**
3901.20	Polyethylene having a specific gravity of 0.94 or more	**CTH**
3901.30	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s	**CTH**
3901.90	Other	**CTH**
3902	Polymers of propylene or of other olefins, in primary forms.	
3902.10	Polypropylene	**CTH**
3902.20	Polyisobutylene	**CTH**
3902.30	Propylene copolymers	**CTH**
3902.90	Other	**CTH**
3903	Polymers of styrene, in primary forms.	
3903.1	Polystyrene:	
3903.11	Expansible	**CTH**
3903.19	Other	**CTH**
3903.20	Styrene-acrylonitrile (SAN) copolymers	**CTH**
3903.30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ABS) copolymers	**CTH**
3903.90	Other	**CTH**
3904	Polymers of vinyl chloride or of other halogenated olefins, in primary forms.	
3904.10	Poly (vinyl chloride), not mixed with any other substances	**CTH**
3904.2	Other poly (vinyl chloride):	
3904.21	Non-plasticised	**CTH**
3904.22	Plasticised	**CTH**
3904.30	Vinyl chloride-vinyl acetate copolymers	**CTH**
3904.40	Other vinyl chloride copolymers	**CTH**
3904.50	Vinylidene chloride polymers	**CTH**
3904.6	Fluoro-polymers:	
3904.61	Polytetrafluoroethylene	**CTH**
3904.69	Other	**CTH**
3904.90	Other	**CTH**
3905	Polymers of vinyl acetate or of other vinyl esters, in primary forms; other vinyl polymers in primary forms.	
3905.1	Poly(vinyl acetate):	
3905.12	In aqueous dispersion	**CTH**
3905.19	Other	**CTH**
3905.2	Vinyl acetate copolymers:	
3905.21	In aqueous dispersion	**CTH**
3905.29	Other	**CTH**
3905.30	Poly(vinyl alcohol), whether or not containing unhydrolysed acetate groups	**CTH**
3905.9	Other:	
3905.91	Copolymers	**CTH**
3905.99	Other	**CTH**
3906	Acrylic polymers in primary forms.	
3906.10	Poly(methyl methacrylate)	**CTH**
3906.90	Other	**CTH**
3907	Polyacetals, other polyethers and epoxide resins, in primary forms; polycarbonates, alkyd resins, polyallyl esters and other polyesters, in primary forms.	
3907.10	Polyacetals	**CTH**
3907.20	Other polyethers	**CTH**
3907.30	Epoxide resins	**CTH**
3907.40	Polycarbonates	**CTH**
3907.50	Alkyd resins	**CTH**
3907.60	Poly(ethylene terephthalate)	**CTH**
3907.70	Poly(lactic acid)	**CTH**
3907.9	Other polyesters:	
3907.91	Unsaturated	**CTH**
3907.99	Other	**CTH**
3908	Polyamides in primary forms.	
3908.10	Polyamide-6, -11, -12, -6,6, -6,9, -6,10 or -6,12	**CTH**
3908.90	Other	**CTH**
3909	Amino-resins, phenolic resins and polyurethanes, in primary forms.	
3909.10	Urea resins; thiourea resins	**CTH**
3909.20	Melamine resins	**CTH**
3909.30	Other amino-resins	**CTH**
3909.40	Phenolic resins	**CTH**
3909.50	Polyurethanes	**CTH**
3910.00	Silicones in primary forms.	**CTH**
3911	Petroleum resins, coumarone-indene resins, polyterpenes, polysulphides, polysulphones and other products specified in Note 3 to this Chapter,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in primary forms.	
3911.10	Petroleum resins, coumarone, indene or coumarone-indene resins and polyterpenes	**CTH**
3911.90	Other	**CTH**
3912	Cellulose and its chemical derivativ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in primary forms.	
3912.1	Cellulose acetates:	
3912.11	Non-plasticised	**CTH**
3912.12	Plasticised	**CTH**
3912.20	Cellulose nitrates (including collodions)	**CTH**
3912.3	Cellulose ethers:	
3912.31	Carboxymethylcellulose and its salts	**CTH**
3912.39	Other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3912.90	Other	CTH
3913	Natural polymers (for example, alginic acid) and modified natural polymers (for example, hardened proteins, chemical derivatives of natural rubber),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in primary forms.	
3913.10	Alginic acid, its salts and esters	CTH
3913.90	Other	CTH
3914.00	Ion-exchangers based on polymers of headings 39.01 to 39.13, in primary forms.	CTH
3915	Waste, parings and scrap, of plastics.	
3915.10	Of polymers of ethylene	CTH
3915.20	Of polymers of styrene	CTH
3915.30	Of polymers of vinyl chloride	CTH
3915.90	Of other plastics	CTH
3916	Monofilament of which any cross-sectional dimension exceeds 1 ㎜, rods, sticks and profile shapes, whether or not surface-worked but not otherwise worked, of plastics.	
3916.10	Of polymers of ethylene	CTSH
3916.20	Of polymers of vinyl chloride	CTSH
3916.90	Of other plastics	CTSH
3917	Tubes, pipes and hoses, and fittings therefor (for example, joints, elbows, flanges), of plastics.	
3917.10	Artificial guts (sausage casings) of hardened protein or of cellulosic materials	CTSH
3917.2	Tubes, pipes and hoses, rigid:	
3917.21	Of polymers of ethylene	CTSH
3917.22	Of polymers of propylene	CTSH
3917.23	Of polymers of vinyl chloride	CTSH
3917.29	Of other plastics	CTSH
3917.3	Other tubes, pipes and hoses:	
3917.31	Flexible tubes, pipes and hoses, having a minimum burst pressure of 27.6 Mpa	CTSH
3917.32	Other, not reinforced or otherwise combined with other materials, without fittings	CTSH
3917.33	Other, not reinforced or otherwise combined with other materials, with fittings	CTSH
3917.39	Other	CTSH
3917.40	Fittings	CTSH
3918	Floor coverings of plastics, whether or not self-adhesive, in rolls or in the form of tiles; wall or ceiling coverings of plastics, as defined in Note 9 to this Chapter.	
3918.10	Of polymers of vinyl chloride	CTSH
3918.90	Of other plastics	CTSH
3919	Self-adhesive plates, sheets, film, foil, tape, strip and other flat shapes, of plastics, whether or not in rolls.	
3919.10	In rolls of a width not exceeding 20 cm	CTH
3919.90	Other	CTH
3920	Other plates, sheets, film, foil and strip, of plastics, non-cellular and not reinforced, laminated, supported or similarly combined with other materials.	
3920.10	Of polymers of ethylene	CTSH
3920.20	Of polymers of propylene	CTSH
3920.30	Of polymers of styrene	CTSH
3920.4	Of polymers of vinyl chloride:	
3920.43	Containing by weight not less than 6 % of plasticisers	CTSH
3920.49	Other	CTSH
3920.5	Of acrylic polymers:	
3920.51	Of poly(methyl methacrylate)	CTSH
3920.59	Other	CTSH
3920.6	Of polycarbonates, alkyd resins, polyallyl esters or other polyesters:	
3920.61	Of polycarbonates	CTSH
3920.62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CTSH
3920.63	Of unsaturated polyesters	CTSH
3920.69	Of other polyesters	CTSH
3920.7	Of cellulose or its chemical derivatives:	
3920.71	Of regenerated cellulose	CTSH
3920.73	Of cellulose acetate	CTSH
3920.79	Of other cellulose derivatives	CTSH
3920.9	Of other plastics:	
3920.91	Of poly(vinyl butyral)	CTSH
3920.92	Of polyamides	CTSH
3920.93	Of amino-resins	CTSH
3920.94	Of phenolic resins	CTSH
3920.99	Of other plastics	CTSH
3921	Other plates, sheets, film, foil and strip, of plastics.	
3921.1	Cellular:	
3921.11	Of polymers of styrene	CTSH
3921.12	Of polymers of vinyl chloride	CTSH
3921.13	Of polyurethanes	CTSH
3921.14	Of regenerated cellulose	CTSH
3921.19	Of other plastics	CTSH
3921.90	Other	CTSH
3922	Baths, shower-baths, sinks, wash-basins, bidets, lavatory pans, seats and covers, flushing cisterns and similar sanitary ware, of plastics.	
3922.10	Baths, shower-baths, sinks and wash-basins	CTH
3922.20	Lavatory seats and covers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3922.90	Other	CTH
3923	Articles for the conveyance or packing of goods, of plastics; stoppers, lids, caps and other closures, of plastics.	
3923.10	Boxes, cases, crates and similar articles	CTH
3923.2	Sacks and bags (including cones):	
3923.21	Of polymers of ethylene	CTH
3923.29	Of other plastics	CTH
3923.30	Carboys, bottles, flasks and similar articles	CTH
3923.40	Spools, cops, bobbins and similar supports	CTH
3923.50	Stoppers, lids, caps and other closures	CTH
3923.90	Other	CTH
3924	Tableware, kitchenware, other household articles and hygienic or toilet articles, of plastics.	
3924.10	Tableware and kitchenware	CTH
3924.90	Other	CTH
3925	Builders' ware of plastic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3925.10	Reservoirs, tanks, vats and similar containers, of a capacity exceeding 300 ℓ	CTH
3925.20	Doors, windows and their frames and thresholds for doors	CTH
3925.30	Shutters, blinds (including Venetian blinds) and similar articles and parts thereof	CTH
3925.90	Other	CTH
3926	Other articles of plastics and articles of other materials of headings 3901 to 3914.	
3926.10	Office or school supplies	CTH
3926.20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including gloves, mittens and mitts)	CTH
3926.30	Fittings for furniture, coachwork or the like	CTH
3926.40	Statuettes and other ornamental articles	CTH
3926.90	Other	CTH
40	CHAPTER 40 RUBBER AND ARTICLES THEREOF	
4001	Natural rubber, balata, gutta-percha, guayule, chicle and similar natural gums, in primary forms or in plates, sheets or strip.	
4001.10	Natural rubber latex, whether or not pre-vulcanised	CTSH
4001.2	Natural rubber in other forms:	
4001.21	Smoked sheets	CTSH
4001.22	Technically specified natural rubber (TSNR)	CTSH
4001.29	Other	CTSH
4001.30	Balata, gutta-percha, guayule, chicle and similar natural gums	CTSH
4002	Synthetic rubber and factice derived from oils, in primary forms or in plates, sheets or strip; mixtures of any product of heading 40.01 with any product of this heading, in primary forms or in plates, sheets or strip.	
4002.1	Styrene-butadiene rubber (SBR); carboxylated styrene-butadiene rubber (XSBR):	
4002.11	Latex	CTSH
4002.19	Other	CTSH
4002.20	Butadiene rubber (BR)	CTSH
4002.3	Isobutene-isoprene (butyl) rubber (IIR); halo-isobutene-isoprene rubber (CIIR or BIIR):	
4002.31	Isobutene-isoprene (butyl) rubber (IIR)	CTSH
4002.39	Other	CTSH
4002.4	Chloroprene (chlorobutadiene) rubber (CR):	
4002.41	Latex	CTSH
4002.49	Other	CTSH
4002.5	Acrylonitrile-butadiene rubber (NBR):	
4002.51	Latex	CTSH
4002.59	Other	CTSH
4002.60	Isoprene rubber (IR)	CTSH
4002.70	Ethylene-propylene-non-conjugated diene rubber (EPDM)	CTSH
4002.80	Mixtures of any product of heading 40.01 with any product of this heading	CTH or RVC(40)
4002.9	Other:	
4002.91	Latex	CTH or RVC(40)
4002.99	Other	CTH or RVC(40)
4003.00	Reclaimed rubber in primary forms or in plates, sheets or strip.	CTH
4004.00	Waste, parings and scrap of rubber (other than hard rubber) and powders and granules obtained therefrom.	CTH
4005	Compounded rubber, unvulcanised, in primary forms or in plates, sheets or strip.	
4005.10	Compounded with carbon black or silica	CTH
4005.20	Solutions; dispersions other than those of subheading 4005.10	CTH
4005.9	Other:	
4005.91	Plates, sheets and strip	CTH
4005.99	Other	CTH
4006	Other forms (for example, rods, tubes and profile shapes) and articles (for example, discs and rings), of unvulcanised rubber.	
4006.10	"Camel-back" strips for retreading rubber tyres	CTH
4006.90	Other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4007.00	Vulcanised rubber thread and cord.	CTH
4008	Plates, sheets, strip, rods and profile shapes, of vulcanised rubber other than hard rubber.	
4008.1	Of cellular rubber:	
4008.11	Plates, sheets and strip	CTH
4008.19	Other	CTH
4008.2	Of non-cellular rubber:	
4008.21	Plates, sheets and strip	CTH
4008.29	Other	CTH
4009	Tubes, pipes and hoses, of vulcanised rubber other than hard rubber, with or without their fittings (for example, joints, elbows, flanges).	
4009.1	Not reinforced or otherwise combined with other materials:	
4009.11	Without fittings	CTH
4009.12	With fittings	CTH
4009.2	Reinforced or otherwise combined only with metal:	
4009.21	Without fittings	CTH
4009.22	With fittings	CTH
4009.3	Reinforced or otherwise combined only with textile materials:	
4009.31	Without fittings	CTH
4009.32	With fittings	CTH
4009.4	Reinforced or otherwise combined with other materials:	
4009.41	Without fittings	CTH
4009.42	With fittings	CTH
4010	Conveyor or transmission belts or belting, of vulcanised rubber.	
4010.1	Conveyor belts or belting:	
4010.11	Reinforced only with metal	CTH
4010.12	Reinforced only with textile materials	CTH
4010.19	Other	CTH
4010.3	Transmission belts or belting:	
4010.31	Endless transmission belts of trapezoidal cross-section (V- belts), V-ribbed, of an outside circumference exceeding 60 cm but not exceeding 180 cm	CTH
4010.32	Endless transmission belts of trapezoidal cross-section (V- belts), other than V-ribbed, of an outside circumference exceeding 60 cm but not exceeding 180 cm	CTH
4010.33	Endless transmission belts of trapezoidal cross-section (V-belts), V-ribbed, of an outside circumference exceeding 180 cm but not exceeding 240 cm	CTH
4010.34	Endless transmission belts of trapezoidal cross-section (V-belts), other than V-ribbed, of an outside circumference exceeding 180 cm but not exceeding 240 cm	CTH
4010.35	Endless synchronous belts, of an outside circumference exceeding 60 cm but not exceeding 150 cm	CTH
4010.36	Endless synchronous belts, of an outside circumference exceeding 150 cm but not exceeding 198 cm	CTH
4010.39	Other	CTH
4011	New pneumatic tyres, of rubber	
4011.10	Of a kind used on motor cars (including station wagons and racing cars)	CTH
4011.20	Of a kind used on buses or lorries	CTH
4011.30	Of a kind used on aircraft	CTH
4011.40	Of a kind used on motorcycles	CTH
4011.50	Of a kind used on bicycles	CTH
4011.6	Other, having a "herring-bone" or similar tread:	
4011.61	Of a kind used on agricultural or forestry vehicles and machines	CTH
4011.62	Of a kind used on construction or industrial handling vehicles and machines and having a rim size not exceeding 61 cm	CTH
4011.63	Of a kind used on construction or industrial handling vehicles and machines and having a rim size exceeding 61 cm	CTH
4011.69	Other	CTH
4011.9	Other:	
4011.92	Of a kind used on agricultural or forestry vehicles and machines	CTH
4011.93	Of a kind used on construction or industrial handling vehicles and machines and having a rim size not exceeding 61 cm	CTH
4011.94	Of a kind used on construction or industrial handling vehicles and machines and having a rim size exceeding 61 cm	CTH
4011.99	Other	CTH
4012	Retreaded or used pneumatic tyres of rubber; solid or cushion tyres, tyre treads and tyre flaps, of rubber.	
4012.1	Retreaded tyres:	
4012.11	Of a kind used on motor cars (including station wagons and racing cars)	CTH
4012.12	Of a kind used on buses or lorries	CTH
4012.13	Of a kind used on aircraft	CTH
4012.19	Other	CTH
4012.20	Used pneumatic tyres	CTH
4012.90	Other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4013	Inner tubes, of rubber.	
4013.10	Of a kind used on motor cars (including station wagons and racing cars), buses or lorries	CTH
4013.20	Of a kind used on bicycles	CTH
4013.90	Other	CTH
4014	Hygienic or pharmaceutical articles (including teats), of vulcanised rubber other than hard rubber, with or without fittings of hard rubber.	
4014.10	Sheath contraceptives	CTH
4014.90	Other	CTH
4015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including gloves, mittens and mitts), for all purposes, of vulcanised rubber other than hard rubber.	
4015.1	Gloves, mittens and mitts:	
4015.11	Surgical	CTH
4015.19	Other	CTH
4015.90	Other	CTH
4016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other than hard rubber.	
4016.10	Of cellular rubber	CTH
4016.9	Other:	
4016.91	Floor coverings and mats	CTH
4016.92	Erasers	CTH
4016.93	Gaskets, washers and other seals	CTH
4016.94	Boat or dock fenders, whether or not inflatable	CTH
4016.95	Other inflatable articles	CTH
4016.99	Other	CTH
4017.00	Hard rubber (for example, ebonite) in all forms, including waste and scrap; articles of hard rubber.	CTH
	SECTION VIII RAW HIDES AND SKINS, LEATHER, FURSKINS AND ARTICLES THEREOF; SADDLERY AND HARNESS; TRAVEL GOODS, HANDBAGS AND SIMILAR CONTAINERS; ARTICLES OF ANIMAL GUT (OTHER THAN SILK-WORM GUT) (Chapters 41 – 43)	
41	CHAPTER 41 RAW HIDES AND SKINS (OTHER THAN FURSKINS) AND LEATHER	
4101	Raw hides and skins of bovine (including buffalo) or equine animals (fresh, or salted, dried, limed, pickled or otherwise preserved, but not tanned, parchment-dressed or further prepared), whether or not dehaired or split.	
4101.20	Whole hides and skins, unsplit, of a weight per skin not exceeding 8 kg when simply dried,10 kg when dry-salted, or 16 kg when fresh, wet-salted or otherwise preserved	CC
4101.50	Whole hides and skins, of a weight exceeding 16 kg	CC
4101.90	Other, including butts, bends and bellies	CC
4102	Raw skins of sheep or lambs (fresh, or salted, dried, limed, pickled or otherwise preserved, but not tanned, parchment-dressed or further prepared), whether or not with wool on or split, other than those excluded by Note 1 (c) to this Chapter.	
4102.10	With wool on	CC
4102.2	Without wool on:	
4102.21	Pickled	CC
4102.29	Other	CC
4103	Other raw hides and skins (fresh, or salted, dried, limed, pickled or otherwise preserved, but not tanned, parchment-dressed or further prepared), whether or not dehaired or split, other than those excluded by Note 1 (b) or 1 (c) to this Chapter.	
4103.20	Of reptiles	CC
4103.30	Of swine	CC
4103.90	Other	CC
4104	Tanned or crust hides and skins of bovine (including buffalo) or equine animals, without hair on, whether or not split, but not further prepared.	
4104.1	In the wet state (including wet-blue):	
4104.11	Full grains, unsplit; grain splits	CTH
4104.19	Other	CTH
4104.4	In the dry state (crust):	
4104.41	Full grains, unsplit; grain splits	CTSH
4104.49	Other	CTSH except from subheading 4104.41
4105	Tanned or crust skins of sheep or lambs, without wool on, whether or not split, but not further prepared.	
4105.10	In the wet state (including wet-blue)	CTH
4105.30	In the dry state (crust)	CTSH
4106	Tanned or crust hides and skins of other animals, without wool or hair on, whether or not split, but not further prepared.	
4106.2	Of goats or kids:	
4106.21	In the wet state (including wet-blue)	CTH
4106.22	In the dry state (crust)	CTSH
4106.3	Of swine:	
4106.31	In the wet state (including wet-blue)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4106.32	In the dry state (crust)	CTSH
4106.40	Of reptiles	CTH
4106.9	Other:	
4106.91	In the wet state (including wet-blue)	CTH
4106.92	In the dry state (crust)	CTSH
4107	Leather further prepared after tanning or crusting, including parchment-dressed leather, of bovine (including buffalo) or equine animals, without hair on, whether or not split, other than leather of heading 41.14.	
4107.1	Whole hides and skins:	
4107.11	Full grains, unsplit	CTH
4107.12	Grain splits	CTH
4107.19	Other	CTH
4107.9	Other, including sides:	
4107.91	Full grains, unsplit	CTH
4107.92	Grain splits	CTH
4107.99	Other	CTH
4112.00	Leather further prepared after tanning or crusting, including parchment-dressed leather, of sheep or lamb, without wool on, whether or not split, other than leather of heading 41.14.	CTH
4113	Leather further prepared after tanning or crusting, including parchment-dressed leather, of other animals, without wool or hair on, whether or not split, other than leather of heading 41.14.	
4113.10	Of goats or kids	CTH
4113.20	Of swine	CTH
4113.30	Of reptiles	CTH
4113.90	Other	CTH
4114	Chamois (including combination chamois) leather; patent leather and patent laminated leather; metallised leather.	
4114.10	Chamois (including combination chamois) leather	CTSH
4114.20	Patent leather and patent laminated leather; metallised leather	CTSH
4115	Composition leather with a basis of leather or leather fibre, in slabs, sheets or strip, whether or not in rolls; parings and other waste of leather or of composition leather, not suitable for the manufacture of leather articles; leather dust, powder and flour.	
4115.10	Composition leather with a basis of leather or leather fibre, in slabs, sheets or strip, whether or not in rolls	CTSH
4115.20	Parings and other waste of leather or of composition leather, not suitable for the manufacture of leather articles; leather dust, powder and flour	CTSH
42	CHAPTER 42 ARTICLES OF LEATHER; SADDLERY AND HARNESS; TRAVEL GOODS, HANDBAGS AND SIMILAR CONTAINERS; ARTICLES OF ANIMAL GUT (OTHER THAN SILK-WORM GUT)	
4201.00	Saddlery and harness for any animal (including traces, leads, knee pads, muzzles, saddle cloths, saddle bags, dog coats and the like), of any material.	CTH
4202	Trunks, suit-cases, vanity-cases, executive-cases, brief-cases, school satchels, spectacle cases, binocular cases, camera cases, musical instrument cases, gun cases, holsters and similar containers; travelling-bags, insulated food or beverages bags, toilet bags, rucksacks, handbags, shopping-bags, wallets, purses, map-cases, cigarette-cases, tobacco-pouches, tool bags, sports bags, bottle-cases, jewellery boxes, powder-boxes, cutlery cases and similar containers, of leather or of composition leather, of sheeting of plastics, of textile materials, of vulcanised fibre or of paperboard, or wholly or mainly covered with such materials or with paper.	
4202.1	Trunks, suit-cases, vanity-cases, executive-cases, brief-cases, school satchels and similar containers:	
4202.11	With outer surface of leather or of composition leather	CTH
4202.12	With outer surface of plastics or of textile materials	CTH
4202.19	Other	CTH
4202.2	Handbags, whether or not with shoulder strap, including those without handle:	
4202.21	With outer surface of leather or of composition leather	CTH
4202.22	With outer surface of plastic sheeting or of textile materials	CTH
4202.29	Other	CTH
4202.3	Articles of a kind normally carried in the pocket or in the handbag:	
4202.31	With outer surface of leather or of composition leather	CTH
4202.32	With outer surface of plastic sheeting or of textile materials	CTH
4202.39	Other	CTH
4202.9	Other:	
4202.91	With outer surface of leather or of composition leather	CTH
4202.92	With outer surface of plastic sheeting or of textile materials	CTH
4202.99	Other	CTH
4203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of leather or of composition leather.	
4203.10	Articles of apparel	CTH
4203.2	Gloves, mittens and mitts:	
4203.21	Specially designed for use in sports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4203.29	Other	CTH
4203.30	Belts and bandoliers	CTH
4203.40	Other clothing accessories	CTH
4205.00	Other articles of leather or of composition leather.	CTH
4206.00	Articles of gut (other than silk-worm gut), of goldbeater's skin, of bladders or of tendons.	CTH
43	CHAPTER 43 FURSKINS AND ARTIFICIAL FUR; MANUFACTURES THEREOF	
4301	Raw furskins (including heads, tails, paws and other pieces or cuttings, suitable for furriers' use), other than raw hides and skins of heading 41.01, 41.02 or 41.03.	
4301.10	Of mink, whole, with or without head, tail or paws	CTH
4301.30	Of lamb, the following: Astrakhan, Broadtail, Caracul, Persian and similar lamb, Indian, Chinese, Mongolian or Tibetan lamb, whole, with or without head, tail or paws	CTH
4301.60	Of fox, whole, with or without head, tail or paws	CTH
4301.80	Other furskins, whole, with or without head, tail or paws	CTH
4301.90	Heads, tails, paws and other pieces or cuttings, suitable for furriers' use	CTH
4302	Tanned or dressed furskins (including heads, tails, paws and other pieces or cuttings), unassembled, or assembled (without the addition of other material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43.03.	
4302.1	Whole skins, with or without head, tail or paws, not assembled:	
4302.11	Of mink	CTH
4302.19	Other	CTH
4302.20	Heads, tails, paws and other pieces or cuttings, not assembled	CTH
4302.30	Whole skins and pieces or cuttings thereof, assembled	CTH
4303	Articles of apparel, clothing accessories and other articles of furskin.	
4303.10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CTH
4303.90	Other	CTH
4304.00	Artificial fur and articles thereof.	CTH
	SECTION IX WOOD AND ARTICLES OF WOOD; WOOD CHARCOAL; CORK AND ARTICLES OF CORK; MANUFACTURES OF STRAW, OF ESPARTO OR OF OTHER PLAITING MATERIALS; BASKETWARE AND WICKERWORK (Chapters 44 – 46)	
44	CHAPTER 44 WOOD AND ARTICLES OF WOOD; WOOD CHARCOAL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4401	Fuel wood, in logs, in billets, in twigs, in faggots or in similar forms; wood in chips or particles; sawdust and wood waste and scrap, whether or not agglomerated in logs, briquettes, pellets or similar forms:	
4401.10	Fuel wood, in logs, in billets, in twigs, in faggots or in similar forms	CTH
4401.2	Wood in chips or particles:	
4401.21	Coniferous	CTH
4401.22	Non-coniferous	CTH
4401.3	Sawdust and wood waste and scrap, whether or not agglomerated in logs, briquettes, pellets or similar forms:	
4401.31	Wood pellets	CTH
4401.39	Other	CTH
4402	Wood charcoal (including shell or nut charcoal), whether or not agglomerated.	
4402.10	Of bamboo	CTH
4402.90	Other	CTH
4403	Wood in the rough, whether or not stripped of bark or sapwood, or roughly squared.	
4403.10	Treated with paint, stains, creosote or other preservatives	CTH
4403.20	Other, coniferous	CTH
4403.4	Other, of tropical wood specified in Subheading Note 1 to this Chapter:	
4403.41	Dark Red Meranti, Light Red Meranti and Meranti Bakau	CTH
4403.49	Other	CTH
4403.9	Other:	
4403.91	Of oak (*Quercus spp.*)	CTH
4403.92	Of beech (*Fagus spp.*)	CTH
4403.99	Other	CTH
4404	Hoopwood; split poles; piles, pickets and stakes of wood, pointed but not sawn lengthwise; wooden sticks, roughly trimmed but not turned, bent or otherwise worked, suitable for the manufacture of walking-sticks, umbrellas, tool handles or the like; chipwood and the like.	
4404.10	Coniferous	CTH
4404.20	Non-coniferous	CTH
4405.00	Wood wool; wood flour.	CTH
4406	Railway or tramway sleepers (cross-ties) of wood.	
4406.10	Not impregnated	CTH
4406.90	Other	CTH
4407	Wood sawn or chipped lengthwise, sliced or peeled, whether or not planed, sanded or end-jointed, of a thickness exceeding 6 ㎜.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4407.10	Coniferous	CTH
4407.2	Of tropical wood specified in Subheading Note 1 to this Chapter:	
4407.21	Mahogany (*Swietenia spp.*)	CTH
4407.22	Virola, Imbuia and Balsa	CTH
4407.25	Dark Red Meranti, Light Red Meranti and Meranti Bakau	CTH
4407.26	White Lauan, White Meranti, White Seraya, Yellow Meranti and Alan	CTH
4407.27	Sapelli	CTH
4407.28	Iroko	CTH
4407.29	Other	CTH
4407.9	Other:	
4407.91	Of oak (*Quercus spp.*)	CTH
4407.92	Of beech (*Fagus spp.*)	CTH
4407.93	Of maple (*Acer spp.*)	CTH
4407.94	Of cherry (*Prunus spp.*)	CTH
4407.95	Of ash (*Fraxinus spp.*)	CTH
4407.99	Other	CTH
4408	Sheets for veneering (including those obtained by slicing laminated wood), for plywood or for similar laminated wood and other wood, sawn lengthwise, sliced or peeled, whether or not planed, sanded, spliced or end-jointed, of a thickness not exceeding 6 ㎜.	
4408.10	Coniferous	CTH
4408.3	Of tropical wood specified in Subheading Note 1 to this Chapter:	
4408.31	Dark Red Meranti, Light Red Meranti and Meranti Bakau	CTH
4408.39	Other	CTH
4408.90	Other	CTH
4409	Wood (including strips and friezes for parquet flooring, not assembled) continuously shaped (tongued, grooved, rebated, chamfered, V-jointed, beaded, moulded, rounded or the like) along any of its edges, ends or faces, whether or not planed, sanded or end-jointed.	
4409.10	Coniferous	CTH
4409.2	Non-coniferous:	
4409.21	Of bamboo	CTH
4409.29	Other	CTH
4410	Particle board, oriented strand board (OSB) and similar board (for example, wafer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 whether or not agglomerated with resins or other organic binding substances.	
4410.1	Of wood:	
4410.11	Particle board	CTH
4410.12	Oriented strand board (OSB)	CTH
4410.19	Other	CTH
4410.90	Other	CTH
4411	Fibre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 whether or not bonded with resins or other organic substances.	
4411.1	Medium density fibreboard (MDF):	
4411.12	Of a thickness not exceeding 5 mm	CTH
4411.13	Of a thickness exceeding 5 mm but not exceeding 9 mm	CTH
4411.14	Of a thickness exceeding 9 mm	CTH
4411.9	Other:	
4411.92	Of a density exceeding 0.8 g/cm³	CTH
4411.93	Of a density exceeding 0.5 g/cm³ but not exceeding 0.8 g/cm³	CTH
4411.94	Of a density not exceeding 0.5 g/cm³	CTH
4412	Plywood, veneered panels and similar laminated wood.	
4412.10	Of bamboo	CTH
4412.3	Other plywood, consisting solely of sheets of wood (other than bamboo), each ply not exceeding 6 mm thickness:	
4412.31	With at least one outer ply of tropical wood specified in Subheading Note 1 to this Chapter	CTH
4412.32	Other, with at least one outer ply of non-coniferous wood	CTH
4412.39	Other	CTH
4412.9	Other:	
4412.94	Blockboard, laminboard and battenboard	CTH
4412.99	Other	CTH
4413.00	Densified wood, in blocks, plates, strips or profile shapes.	CTH
4414.00	Wooden frames for paintings, photographs, mirrors or similar objects.	CTH
4415	Packing cases, boxes, crates, drums and similar packings, of wood; cable-drums of wood; pallets, box pallets and other load boards, of wood; pallet collars of wood.	
4415.10	Cases, boxes, crates, drums and similar packings; cable-drums	CTH
4415.20	Pallets, box pallets and other load boards; pallet collars	CTH
4416.00	Casks, barrels, vats, tubs and other coopers' products and parts thereof, of wood, including staves.	CTH
4417.00	Tools, tool bodies, tool handles, broom or brush bodies and handles, of wood; boot or shoe lasts and trees, of wood.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4418	Builders' joinery and carpentry of wood, including cellular wood panels, assembled flooring panels, shingles and shakes.	
4418.10	Windows, French-windows and their frames	CTH
4418.20	Doors and their frames and thresholds	CTH
4418.40	Shuttering for concrete constructional work	CTH
4418.50	Shingles and shakes	CTH
4418.60	Posts and beams	CTH
4418.7	Assembled flooring panels:	
4418.71	For mosaic floors	CTH
4418.72	Other, multilayer	CTH
4418.79	Other	CTH
4418.90	Other	CTH
4419.00	Tableware and kitchenware, of wood.	CTH
4420	Wood marquetry and inlaid wood; caskets and cases for jewellery or cutlery, and similar articles, of wood; statuettes and other ornaments, of wood; wooden articles of furniture not falling in Chapter 94.	
4420.10	Statuettes and other ornaments, of wood	CTH
4420.90	Other	CTH
4421	Other articles of wood.	
4421.10	Clothes hangers	CTH
4421.90	Other	CTH
45	CHAPTER 45 CORK AND ARTICLES OF CORK	
4501	Natural cork, raw or simply prepared; waste cork; crushed, granulated or ground cork:	
4501.10	Natural cork, raw or simply prepared	CTH
4501.90	Other	CTH
4502.00	Natural cork, debacked or roughly squared, or in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blocks, plates, sheets or strip (including sharp-edged blanks for corks or stoppers).	CTH
4503	Articles of natural cork.	
4503.10	Corks and stoppers	CTH
4503.90	Other	CTH
4504	Agglomerated cork (with or without a binding substance) and articles of agglomerated cork.	
4504.10	Blocks, plates, sheets and strip; tiles of any shape; solid cylinders, including discs	CTH
4504.90	Other	CTH
46	CHAPTER 46 MANUFACTURES OF STRAW, OF ESPARTO OR OF OTHER PLAITING MATERIALS; BASKETWARE AND WICKERWORK	
4601	Plaits and similar products of plaiting materia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to strips; plaiting materials, plaits and similar products of plaiting materials, bound together in parallel strands or woven, in sheet form, whether or not being finished articles (for example, mats, matting, screens):	
4601.2	Mats, matting and screens of vegetable materials:	
4601.21	Of bamboo	CTH
4601.22	Of rattan	CTH
4601.29	Other	CTH
4601.9	Other:	
4601.92	Of bamboo	CTH
4601.93	Of rattan	CTH
4601.94	Of other vegetable materials	CTH
4601.99	Other	CTH
4602	Basketwork, wickerwork and other articles, made directly to shape from plaiting materials or made up from goods of heading 46.01; articles of loofah.	
4602.1	Of vegetable materials:	
4602.11	Of bamboo	CTH
4602.12	Of rattan	CTH
4602.19	Other	CTH
4602.90	Other	CTH
	SECTION X PULP OF WOOD OR OF OTHER FIBROUS CELLULOSIC MATERIAL; RECOVERED (WASTE AND SCRAP) PAPER OR PAPERBOARD; PAPER AND PAPERBOARD AND ARTICLES THEREOF (Chapters 47 – 49)	
47	CHAPTER 47 PULP OF WOOD OR OF OTHER FIBROUS CELLULOSIC MATERIAL; RECOVERED (WASTE AND SCRAP) PAPER OR PAPERBOARD	
4701.00	Mechanical wood pulp	CTH
4702.00	Chemical wood pulp, dissolving grades.	CTH
4703	Chemical wood pulp, soda or sulphate, other than dissolving grades.	
4703.1	Unbleached:	
4703.11	Coniferous	CTH
4703.19	Non-coniferous	CTH
4703.2	Semi-bleached or bleached:	
4703.21	Coniferous	CTSH
4703.29	Non-coniferous	CTSH
4704	Chemical wood pulp, sulphite, other than dissolving grades.	
4704.1	Unbleached:	
4704.11	Coniferous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4704.19	Non-coniferous	CTH
4704.2	Semi-bleached or bleached:	
4704.21	Coniferous	CTSH
4704.29	Non-coniferous	CTSH
4705.00	Wood pulp obtained by a combination of mechanical and chemical pulping processes.	CTH
4706	Pulps of fibres derived from recovered (waste and scrap) paper or paperboard or of other fibrous cellulosic material.	
4706.10	Cotton linters pulp	CTH
4706.20	Pulps of fibres derived from recovered (waste and scrap) paper or paperboard	CTH
4706.30	Other, of bamboo	CTH
4706.9	Other:	
4706.91	Mechanical	CTH
4706.92	Chemical	CTH
4706.93	Obtained by a combination of mechanical and chemical processes	CTH
4707	Recovered (waste and scrap) paper or paperboard.	
4707.10	Unbleached kraft paper or paperboard or corrugated paper or paperboard	CTH
4707.20	Other paper or paperboard made mainly of bleached chemical pulp, not coloured in the mass	CTH
4707.30	Paper or paperboard made mainly of mechanical pulp (for example, newspapers, journals and similar printed matter)	CTH
4707.90	Other, including unsorted waste and scrap	CTH
48	CHAPTER 48 PAPER AND PAPERBOARD; ARTICLES OF PAPER PULP, OF PAPER OR OF PAPERBOARD	
4801.00	Newsprint, in rolls or sheets:	CTH
4802	Uncoated paper and paperboard, of a kind used for writing, printing or other graphic purposes, and non perforated punch-cards and punch tape paper, in rolls or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of any size, other than paper of heading 48.01 or 48.03; hand-made paper and paperboard.	
4802.10	Hand-made paper and paperboard	CTH
4802.20	Paper and paperboard of a kind used as a base for photo-sensitive, heat-sensitive or electro-sensitive paper or paperboard	CTH
4802.40	Wallpaper base	CTH
4802.5	Other paper and paperboard, not containing fibres obtained by a mechanical or chemi-mechanical process or of which not more than 10 %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such fibres:	
4802.54	Weighing less than 40 g/m²	CTH
4802.55	Weighing 40 g/m² or more but not more than 150 g/m², in rolls	CTH
4802.56	Weighing 40 g/m² or more but not more than 150 g/m², in sheets with one side not exceeding 435 mm and the other side not exceeding 297 mm in the unfolded state	CTH
4802.57	Other, weighing 40 g/m² or more but not more than 150 g/m²	CTH
4802.58	Weighing more than 150 g/m²	CTH
4802.6	Other paper and paperboard, of which more than 10 %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fibres obtained by a mechanical or chemi-mechanical process.	
4802.61	In rolls	CTH
4802.62	In sheets with one side not exceeding 435 mm and the other side not exceeding 297 mm in the unfolded state	CTH
4802.69	Other	CTH
4803.00	Toilet or facial tissue stock, towel or napkin stock and similar paper of a kind used for household or sanitary purposes, cellulose wadding and webs of cellulose fibres, whether or not creped, crinkled, embossed, perforated, surface-coloured, surface-decorated or printed, in rolls or sheets.	CTH
4804	Uncoated kraft paper and paperboard, in rolls or sheets, other than that of heading 48.02 or 48.03.	
4804.1	Kraftliner:	
4804.11	Unbleached	CTH
4804.19	Other	CTH
4804.2	Sack kraft paper:	
4804.21	Unbleached	CTH
4804.29	Other	CTH
4804.3	Other kraft paper and paperboard weighing 150 g/m² or less:	
4804.31	Unbleached	CTH
4804.39	Other	CTH
4804.4	Other kraft paper and paperboard weighing more than 150 g/m² but less than 225 g/m²:	
4804.41	Unbleached	CTH
4804.42	Bleached uniformly throughout the mass and of which more than 95 %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wood obtained by chemical process	CTH
4804.49	Other	CTH
4804.5	Other kraft paper and paperboard weighing 225 g/m² or more:	
4804.51	Unbleached	CTH
4804.52	Bleached uniformly throughout the mass and of which more than 95 %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wood obtained by a chemical process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4804.59	Other	CTH
4805	Other uncoated paper and paperboard, in rolls or sheets, not further worked or processed than as specified in Note 3 to this Chapter.	
4805.1	Fluting paper:	
4805.11	Semi-chemical fluting paper	CTH
4805.12	Straw fluting paper	CTH
4805.19	Other	CTH
4805.2	Testliner (recycled liner board):	
4805.24	Weighing 150 g/㎡ or less	CTH
4805.25	Weighing more than 150 g/㎡	CTH
4805.30	Sulphite wrapping paper	CTH
4805.40	Filter paper and paperboard	CTH
4805.50	Felt paper and paperboard	CTH
4805.9	Other:	
4805.91	Weighing 150 g/㎡ or less	CTH
4805.92	Weighing more than 150 g/㎡ but less than 225 g/㎡	CTH
4805.93	Weighing 225 g/㎡ or more	CTH
4806	Vegetable parchment, greaseproof papers, tracing papers and glassine and other glazed transparent or translucent papers, in rolls or sheets.	
4806.10	Vegetable parchment	CTH
4806.20	Greaseproof papers	CTH
4806.30	Tracing papers	CTH
4806.40	Glassine and other glazed transparent or translucent papers	CTH
4807.00	Composite paper and paperboard (made by sticking flat layers of paper or paperboard together with an adhesive), not surface-coated or impregnated, whether or not internally reinforced, in rolls or sheets.	CTH
4808	Paper and paperboard, corrugated (with or without glued flat surface sheets), creped, crinkled, embossed or perforated, in rolls or sheets, other than paper of the kind described in heading 48.03.	
4808.10	Corrugated paper and paperboard, whether or not perforated	CTH
4808.40	Kraft paper, creped or crinkled, whether or not embossed or perforated	CTH except from heading 4804
4808.90	Other	CTH
4809	Carbon paper, self-copy paper and other copying or transfer papers (including coated or impregnated paper for duplicator stencils or offset plates), whether or not printed, in rolls or sheets.	
4809.20	Self-copy paper	CTH
4809.90	Other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4810	Paper and paperboard, coated on one or both sides with kaolin (China clay) or other inorganic substances, with or without a binder, and with no other coating, whether or not surface-coloured, surface-decorated or printed, in rolls or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of any size.	
4810.1	Paper and paperboard of a kind used for writing, printing or other graphic purposes, not containing fibres obtained by a mechanical or chemi-mechanical process or of which not more than 10 %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such fibres:	
4810.13	In rolls	CTH
4810.14	In sheets with one side not exceeding 435 mm and the other side not exceeding 297 mm in the unfolded state	CTH
4810.19	Other	CTH
4810.2	Paper and paperboard of a kind used for writing, printing or other graphic purposes, of which more than 10 %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fibres obtained by a mechanical or chemi-mechanical process:	
4810.22	Light-weight coated paper	CTH
4810.29	Other	CTH
4810.3	Kraft paper and paperboard, other than that of a kind used for writing, printing or other graphic purposes:	
4810.31	Bleached uniformly throughout the mass and of which more than 95 %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wood fibres obtained by a chemical process, and weighing 150 g/㎡ or less	CTH
4810.32	Bleached uniformly throughout the mass and of which more than 95 %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wood fibres obtained by a chemical process, and weighing more than 150 g/㎡	CTH
4810.39	Other	CTH
4810.9	Other paper and paperboard:	
4810.92	Multi-ply	CTH
4810.99	Other	CTH
4811	Paper, paperboard, cellulose wadding and webs of cellulose fibres, coated, impregnated, covered, surface-coloured, surface-decorated or printed, in rolls or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of any size, other than goods of the kind described in heading 48.03, 48.09 or 48.10.	
4811.10	Tarred, bituminised or asphalted paper and paperboard	CTH
4811.4	Gummed or adhesive paper and paperboard:	
4811.41	Self-adhesive	CTH
4811.49	Other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4811.5	Paper and paperboard coated, impregnated or covered with plastics (excluding adhesives):	
4811.51	Bleached, weighing more than 150 g/m²	CTH
4811.59	Other	CTH
4811.60	Paper and paperboard, coated, impregnated or covered with wax, paraffin wax, stearin, oil or glycerol	CTH
4811.90	Other paper, paperboard, cellulose wadding and webs of cellulose fibres	CTH
4812.00	Filter blocks, slabs and plates, of paper plup.	CTH
4813	Cigarette paper, whether or not cut to size or in the form of booklets or tubes.	
4813.10	In the form of booklets or tubes	CTH
4813.20	In rolls of a width not exceeding 5 cm	CTH
4813.90	Other	CTH
4814	Wallpaper and similar wall coverings; window transparencies of paper.	
4814.20	Wallpaper and similar wall coverings, consisting of paper coated or covered, on the face side, with a grained, embossed, coloured, design-printed or otherwise decorated layer of plastics	CTH
4814.90	Other	CTH
4816	Carbon paper, self-copy paper and other copying or transfer paper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48.09), duplicator stencils and offset plates, of paper, whether or not put up in boxes.	
4816.20	Self-copy paper	CTH except from heading 4809
4816.90	Other	CTH except from heading 4809
4817	Envelopes, letter cards, plain postcards and correspondence cards, of paper or paperboard; boxes, pouches, wallets and writing compendiums, of paper or paperboard, containing an assortment of paper stationery.	
4817.10	Envelopes	CTH
4817.20	Letter cards, plain postcards and correspondence cards	CTH
4817.30	Boxes, pouches, wallets and writing compendiums, of paper or paperboard, containing an assortment of paper stationery	CTH
4818	Toilet paper and similar paper, cellulose wadding or webs of cellulose fibres, of a kind used for household or sanitary purposes, in rolls of a width not exceeding 36 cm, or cut to size or shape; handkerchiefs, cleansing tissues, towels, tablecloths, serviettes, bed sheets and similar household, sanitary or hospital articles,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of paper pulp, paper, cellulose wadding or webs of cellulose fibres.	
4818.10	Toilet paper	CTH
4818.20	Handkerchiefs, cleansing or facial tissues and towels	CTH
4818.30	Tablecloths and serviettes	CTH
4818.50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CTH
4818.90	Other	CTH
4819	Cartons, boxes, cases, bags and other packing containers, of paper, paperboard, cellulose wadding or webs of cellulose fibres; box files, letter trays, and similar articles, of paper or paperboard of a kind used in offices, shops or the like.	
4819.10	Cartons, boxes and cases, of corrugated paper or paperboard	CTH
4819.20	Folding cartons, boxes and cases, of non-corrugated paper or paperboard	CTH
4819.30	Sacks and bags, having a base of a width of 40 cm or more	CTH
4819.40	Other sacks and bags, including cones	CTH
4819.50	Other packing containers, including record sleeves	CTH
4819.60	Box files, letter trays, storage boxes and similar articles, of a kind used in offices, shops or the like	CTH
4820	Registers, account books, note books, order books, receipt books, letter pads, memorandum pads, diaries and similar articles, exercise books, blotting-pads, binders (loose-leaf or other), folders, file covers, manifold business forms, interleaved carbon sets and other articles of stationery, of paper or paperboard; albums for samples or for collections and book covers, of paper or paperboard.	
4820.10	Registers, account books, note books, order books, receipt books, letter pads, memorandum pads, diaries and similar articles	CTH
4820.20	Exercise books	CTH
4820.30	Binders (other than book covers), folders and file covers	CTH
4820.40	Manifold business forms and interleaved carbon sets	CTH
4820.50	Albums for samples or for collections	CTH
4820.90	Other	CTH
4821	Paper or paperboard labels of all kinds, whether or not printed.	
4821.10	Printed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4821.90	Other	CTH
4822	Bobbins, spools, cops and similar supports of paper pulp, paper or paperboard (whether or not perforated or hardened).	
4822.10	Of a kind used for winding textile yarn	CTH
4822.90	Other	CTH
4823	Other paper, paperboard, cellulose wadding and webs of cellulose fibres, cut to size or shape; other articles of paper pulp, paper, paperboard, cellulose wadding or webs of cellulose fibres.	
4823.20	Filter paper and paperboard	CTH except from subheading 4805.40
4823.40	Rolls, sheets and dials, printed for self-recording apparatus	CTH
4823.6	Trays, dishes, plates, cups and the like, of paper or paperboard:	
4823.61	Of bamboo	CTSH
4823.69	Other	CTSH
4823.70	Moulded or pressed articles of paper pulp	CTSH
4823.90	Other	CTSH
49	CHAPTER 49 PRINTED BOOKS, NEWSPAPERS, PICTURES AND OTHER PRODUCTS OF THE PRINTING INDUSTRY; MANUSCRIPTS, TYPESCRIPTS AND PLANS	
4901	Printed books, brochures, leaflets and similar printed matter, whether or not in single sheets.	
4901.10	In single sheets, whether or not folded	CTH
4901.9	Other:	
4901.91	Dictionaries and encyclopaedias, and serial instalments thereof	CTH
4901.99	Other	CTH
4902	Newspapers, journals and periodicals, whether or not illustrated or containing advertising material.	
4902.10	Appearing at least four times a week	CTH
4902.90	Other	CTH
4903.00	Children's picture, drawing or colouring books.	CTH
4904.00	Music, printed or in manuscript, whether or not bound or illustrated.	CTH
4905	Maps and hydrographic or similar charts of all kinds including atlases, wall maps, topographical plans and globes, printed.	
4905.10	Globes	CTH
4905.9	Other:	
4905.91	In book form	CTH
4905.99	Other	CTH
4906.00	Plans and drawings for architectural, engineering, industrial, commercial, topographical or similar purposes, being originals drawn by hand; hand-written texts; photographic reproductions on sensitised paper and carbon copies of the foregoing.	CTH
4907.00	Unused postage, revenue or similar stamps of current or new issue in the country in which they have, or will have, a recognised face value; stamp-impressed paper; banknotes; cheque forms; stock, share or bond certificates and similar documents of title.	CTH
4908	Transfers (decalcomanias).	
4908.10	Transfers (decalcomanias), vitrifiable	CTH
4908.90	Other	CTH
4909.00	Printed or illustrated postcards; printed cards bearing personal greetings, messages or announcements, whether or not illustrated, with or without envelopes or trimmings.	CTH
4910.00	Calendars of any kind, printed, including calendar blocks.	CTH
4911	Other printed matter, including printed pictures and photographs.	
4911.10	Trade advertising material, commercial catalogues and the like	CTH
4911.9	Other:	
4911.91	Pictures, designs and photographs	CTH
4911.99	Other	CTH
	SECTION XI TEXTILES AND TEXTILE ARTICLES (Chapters 50 – 63)	
50	CHAPTER 50 SILK	
5001.00	Silk-worm cocoons suitable for reeling	CC
5002.00	Raw silk (not thrown).	CC
5003.00	Silk waste (including cocoons unsuitable for reel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CTH
5004.00	Silk yarn (other than yarn spun from silk waste) not put up for retail sale.	CTH
5005.00	Yarn spun from silk waste, not put up for retail sale.	CTH
5006.00	Silk yarn and yarn spun from silk waste, put up for retail sale; silk-worm gut.	CTH
5007	Woven fabrics of silk or of silk waste.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007.10	Fabrics of noil silk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007.20	Other fabrics, containing 85 % or more by weight of silk or of silk waste other than noil silk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007.90	Other fabric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1	CHAPTER 51 WOOL, FINE OR COARSE ANIMAL HAIR; HORSEHAIR YARN AND WOVEN FABRIC	
5101	Wool, not carded or combed.	
5101.1	Greasy, including fleece-washed wool:	
5101.11	Shorn wool	**CC**
5101.19	Other	**CC**
5101.2	Degreased, not carbonised:	
5101.21	Shorn wool	**CC**
5101.29	Other	**CC**
5101.30	Carbonised	**CC**
5102	Fine or coarse animal hair, not carded or combed.	
5102.1	Fine animal hair:	
5102.11	Of Kashmir (cashmere) goats	**CC**
5102.19	Other	**CC**
5102.20	Coarse animal hair	**CC**
5103	Waste of wool or of fine or coarse animal hair, including yarn waste but excluding garnetted stock.	
5103.10	Noils of wool or of fine animal hair	**CC**
5103.20	Other waste of wool or of fine animal hair	**CC**
5103.30	Waste of coarse animal hair	**CC**
5104.00	Garnetted stock of wool or of fine or coarse animal hair.	**CTH**
5105	Wool and fine or coarse animal hair, carded or combed (including combed wool in fragments).	
5105.10	Carded wool	**CTH**
5105.2	Wool tops and other combed wool:	
5105.21	Combed wool in fragments	**CTH**
5105.29	Other	**CC**
5105.3	Fine animal hair, carded or combed:	
5105.31	Of Kashmir (cashmere) goats	**CC**
5105.39	Other	**CC**
5105.40	Coarse animal hair, carded or combed	**CC**
5106	Yarn of carded wool, not put up for retail sale.	
5106.10	Containing 85 % or more by weight of wool	**CTH**
5106.20	Containing less than 85 % by weight of wool	**CTH**
5107	Yarn of combed wool, not put up for retail sale.	
5107.10	Containing 85 % or more by weight of wool	**CTH**
5107.20	Containing less than 85 % by weight of wool	**CTH**
5108	Yarn of fine animal hair (carded or combed), not put up for retail sale.	
5108.10	Carded	**CTH**
5108.20	Combed	**CTH**
5109	Yarn of wool or fine animal hair, put up for retail sale.	
5109.10	Containing 85 % or more by weight of wool or of fine animal hair	**CTH**
5109.90	Other	**CTH**
5110.00	Yarn of coarse animal hair or of horsehair (including gimped horsehair yarn), whether or not put up for retail sale.	**CTH**
5111	Woven fabrics of carded wool or of carded fine animal hair.	
5111.1	Containing 85 % or more by weight of wool or of fine animal hair: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111.11	Of a weight not exceeding 300 g/m²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111.19	Other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111.20	Other, mixed mainly or solely with man-made filament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111.30	Other, mixed mainly or solely with man-made staple fibre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111.90	Other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112	Woven fabrics of combed wool or of combed fine animal hair.	
5112.1	Containing 85 % or more by weight of wool or of fine animal hair:	
5112.11	Of a weight not exceeding 200 g/m²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112.19	Other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2	CHAPTER 52 COTTON	
5201.00	Cotton, not carded or combed.	**CC**
5202	Cotton waste (includ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5202.10	Yarn waste (including thread waste)	**CTH**
5202.9	Other:	
5202.91	Garnetted stock	**CTH**
5202.99	Other	**CTH**
5203.00	Cotton, carded or combed.	**CC**
5204	Cotton sewing, thread, whether or not put up for retail sale.	
5204.1	Not put up for retail sale:	
5204.11	Containing 85 % or more by weight of cotton	**CTH**
5204.19	Other	**CTH**
5204.20	Put up for retail sale	**CTH**
5205	Cotton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 containing 85 % or more by weight of cotton, not put up for retail sale.	
5205.1	Single yarn, of uncombed fibres:	
5205.11	Measuring 714.29 decitex or more (not exceeding 14 metric number)	**CTH**
5205.12	Measuring less than 714.29 decitex but not less than 232.56 decitex (exceeding 14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43 metric number)	**CTH**
5205.13	Measuring less than 232.56 decitex but not less than 192.31 decitex (exceeding 43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52 metric number)	**CTH**
5205.14	Measuring less than 192.31 decitex but not less than 125 decitex (exceeding 52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80 metric number)	**CTH**
5205.15	Measuring less than 125 decitex (exceeding 80 metric number)	**CTH**
5205.2	Single yarn, of combed fibres:	
5205.21	Measuring 714.29 decitex or more (not exceeding 14 metric number)	**CTH**
5205.22	Measuring less than 714.29 decitex but not less than 232.56 decitex (exceeding 14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43 metric number)	**CTH**
5205.23	Measuring less than 232.56 decitex but not less than 192.31 decitex (exceeding 43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52 metric number)	**CTH**
5205.24	Measuring less than 192.31 decitex but not less than 125 decitex (exceeding 52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80 metric number)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112.20	Other, mixed mainly or solely with man-made filament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112.30	Other, mixed mainly or solely with man-made staple fibre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112.90	Other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113.00	Woven fabrics of coarse animal hair or of horsehair.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205.26	Measuring less than 125 decitex but not less than 106.38 decitex (exceeding 80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94 metric number)	CTH
5205.27	Measuring less than 106.38 decitex but not less than 83.33 decitex (exceeding 94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120 metric number)	CTH
5205.28	Measuring less than 83.33 decitex (exceeding 120 metric number)	CTH
5205.3	Multiple (folded) or cabled yarn, of uncombed fibres:	
5205.31	Measuring per single yarn 714.29 decitex or more (not exceeding 14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CTH
5205.32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714.29 decitex but not less than 232.56 decitex (exceeding 14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43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CTH
5205.33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232.56 decitex but not less than 192.31 decitex (exceeding 43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52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CTH
5205.34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191.31 decitex but not less than 125 decitex (exceeding 52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80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CTH
5205.35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125 decitex (exceeding 80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CTH
5205.4	Multiple (folded) or cabled yarn, of combed fibres:	
5205.41	Measuring per single yarn 714.29 decitex or more (not exceeding 14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CTH
5205.42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714.29 decitex but not less than 232.56 decitex (exceeding 14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43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CTH
5205.43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232.56 decitex but not less than 192.31 decitex (exceeding 43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52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CTH
5205.44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192.31 decitex but not less than 125 decitex (exceeding 52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80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CTH
5205.46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125 decitex but not less than 106.38 decitex (exceeding 80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94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CTH
5205.47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106.38 decitex but not less than 83.33 decitex (exceeding 94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120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CTH
5205.48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83.33 decitex (exceeding 120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206	Cotton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 containing less than 85 % by weight of cotton, not put up for retail sale.	
5206.1	Single yarn, of uncombed fibres:	
5206.11	Measuring 714.29 decitex or more (not exceeding 14 metric number)	CTH
5206.12	Measuring less than 714.29 decitex but not less than 232.56 decitex (exceeding 14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43 metric number)	CTH
5206.13	Measuring less than 232.56 decitex but not less than 192.31 decitex (exceeding 43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52 metric number)	CTH
5206.14	Measuring less than 192.31 decitex but not less than 125 decitex (exceeding 52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80 metric number)	CTH
5206.15	Measuring less than 125 decitex (exceeding 80 metric number)	CTH
5206.2	Single yarn, of combed fibres:	
5206.21	Measuring 714.29 decitex or more (not exceeding 14 metric number)	CTH
5206.22	Measuring less than 714.29 decitex but not less than 232.56 decitex (exceeding 14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43 metric number)	CTH
5206.23	Measuring less than 232.56 decitex but not less than 192.31 decitex (exceeding 43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52 metric number)	CTH
5206.24	Measuring less than 192.31 decitex but not less than 125 decitex (exceeding 52 metric number not exceeding 80 metric number)	CTH
5206.25	Measuring less than 125 decitex (exceeding 80 metric number)	CTH
5206.3	Multiple (folded) or cabled yarn, of uncombed fibres:	
5206.31	Measuring per single yarn 714.29 decitex or more (not exceeding 14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CTH
5206.32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714.29 decitex but not less than 232.56 decitex (exceeding 14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43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CTH
5206.33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232.56 decitex but not less than 192.31 decitex (exceeding 43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52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CTH
5206.34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192.31 decitex but not less than 125 decitex (exceeding 52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80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CTH
5206.35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125 decitex (exceeding 80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206.4	Multiple (folded) of cabled yarn, of combed fibres:	
5206.41	Measuring per single yarn 714.29 decitex or more (not exceeding 14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CTH
5206.42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714.29 decitex but not less than 232.56 decitex (exceeding 14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43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CTH
5206.43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232.56 decitex but not less than 192.31 decitex (exceeding 43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52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CTH
5206.44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192.31 decitex but not less than 125 decitex (exceeding 52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80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CTH
5206.45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125 decitex (exceeding 80 metric number per single yarn)	CTH
5207	Cotton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 put up for retail sale.	
5207.10	Containing 85 % or more by weight of cotton	CTH
5207.90	Other	CTH
5208	Woven fabrics of cotton, containing 85 % or more by weight of cotton, weighing not more than 200 g/m².	
5208.1	Unbleached:	
5208.11	Plain weave, weighing not more than 100 g/m²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08.12	Plain weave, weighing more than 100 g/m²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08.13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08.19	Other fabric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08.2	Bleached:	
5208.21	Plain weave, weighing not more than 100 g/m²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208.22	Plain weave, weighing more than 100 g/m²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08.23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08.29	Other fabric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08.3	Dyed:	
5208.31	Plain weave, weighing not more than 100 g/m²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08.32	Plain weave, weighing more than 100 g/m²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08.33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08.39	Other fabric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208.4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5208.41	Plain weave, weighing not more than 100 g/m²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08.42	Plain weave, weighing more than 100 g/m²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08.43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08.49	Other fabric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08.5	Printed:	
5208.51	Plain weave, weighing not more than 100 g/m²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08.52	Plain weave, weighing more than 100 g/m²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208.59	Other fabric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09	Woven fabrics of cotton, containing 85 % or more by weight of cotton, weighing more than 200 g/㎡.	
5209.1	Unbleached:	
5209.11	Plain weave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09.12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09.19	Other fabric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09.2	Bleached:	
5209.21	Plain weave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09.22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209.29	Other fabric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09.3	Dyed:	
5209.31	Plain weave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09.32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09.39	Other fabric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09.4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5209.41	Plain weave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09.42	Denim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209.43	Other fabrics of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09.49	Other fabric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09.5	Printed:	
5209.51	Plain weave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09.52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09.59	Other fabric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10	Woven fabrics, of cotton, containing less than 85 % by weight of cotton, mixed mainly or solely with man-made fibres, weighing not more than 200 g/m².	
5210.1	Unbleached:	
5210.11	Plain weave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210.19	Other fabric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10.2	Bleached:	
5210.21	Plain weave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10.29	Other fabric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10.3	Dyed: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210.31	Plain weave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10.32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10.39	Other fabric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10.4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210.41	Plain weave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10.49	Other fabric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10.5	Printed:	
5210.51	Plain weave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10.59	Other fabric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11	Woven fabrics of cotton, containing less than 85 % by weight of cotton, mixed mainly or solely with man-made fibres, weighing more than 200 g/㎡.	
5211.1	Unbleached:	
5211.11	Plain weave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11.12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211.19	Other fabric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11.20	Bleach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11.3	Dyed:	
5211.31	Plain weave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11.32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11.39	Other fabric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11.4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5211.41	Plain weave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211.42	Denim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11.43	Other fabrics of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11.49	Other fabric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11.5	Printed:	
5211.51	Plain weave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11.52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11.59	Other fabric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12	Other woven fabrics of cotton.	
5212.1	Weighing not more than 200 g/m²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212.11	Unbleach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12.12	Bleach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12.13	Dy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12.14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12.15	Print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12.2	Weighing more than 200 g/㎡:	
5212.21	Unbleach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12.22	Bleach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212.23	Dy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12.24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212.25	Print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3	CHAPTER 53 OTHER VEGETABLE TEXTILE FIBRES; PAPER YARN AND WOVEN FABRICS OF PAPER YARN	
5301	Flax, raw or processed but not spun; flax tow and waste (includ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5301.10	Flax, raw or retted	**CTH**
5301.2	Flax, broken, scutched, hackled or otherwise processed, but not spun:	
5301.21	Broken or scutched	**CTH**
5301.29	Other	**CTH**
5301.30	Flax tow and waste	**CTH**
5302	True hemp (*Cannabis sativa L.*), raw or processed but not spun; tow and waste of true hemp (includ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5302.10	True hemp, raw or retted	**CTH**
5302.90	Other	**CTH**
5303	Jute and other textile bast fibres (excluding flax, true hemp and ramie), raw or processed but not spun; tow and waste of these fibres (includ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5303.10	Jute and other textile bast fibres, raw or retted	**CTH**
5303.90	Other	**CTH**
5305.00	Coconut, abaca (Manila hemp or *Musa textilis Nee*), ramie and other vegetable textile fibr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raw or processed but not spun; tow, noils and waste of these fibres (includ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CTH**
5306	Flax yarn.	
5306.10	Single	**CTH**
5306.20	Multiple (folded) or cabled	**CTH**
5307	Yarn of jute or of other textile bast fibres of heading 53.03.	
5307.10	Single	**CTH**
5307.20	Multiple (folded) of cabled	**CTH**
5308	Yarn of other vegetable textile fibres; paper yarn.	
5308.10	Coir yarn	**CTH**
5308.20	True hemp yarn	**CTH**
5308.90	Other	**CTH**
5309	Woven fabrics of flax.	
5309.1	Containing 85 % or more by weight of flax:	
5309.11	Unbleached or bleach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309.19	Other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309.2	Containing less than 85 % by weight of flax:	
5309.21	Unbleached or bleach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309.29	Other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310	Woven fabrics of jute or of other textile bast fibres of heading 53.03.	
5310.10	Unbleach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310.90	Other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311.00	Woven fabrics of other vegetable textile fibres; woven fabrics of paper yarn.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4	CHAPTER 54 MAN-MADE FILAMENTS; STRIP AND THE LIKE OF MAN-MADE TEXTILE MATERIALS	
5401	Sewing thread of man-made filaments, whether or not put up for retail sale.	
5401.10	Of synthetic filaments	CC
5401.20	Of artificial filaments	CC
5402	Synthetic filament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 not put up for ratail sale, including synthetic monofilament of less than 67 decitex.	
5402.1	High tenacity yarn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402.11	Of aramids	CC
5402.19	Other	CC
5402.20	High tenacity yarn of polyesters	CC
5402.3	Textured yarn:	
5402.31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measuring per single yarn not more than 50 tex	CC
5402.32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measuring per single yarn more than 50 tex	CC
5402.33	Of polyesters	CC
5402.34	Of polypropylene	CC
5402.39	Other	CC
5402.4	Other yarn, single, untwisted or with a twist of not exceeding 50 turns per metre:	
5402.44	Elastomeric	CC
5402.45	Other,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CC
5402.46	Other, of polyesters, partially oriented	CC
5402.47	Other, of polyesters	CC
5402.48	Other, of polypropylene	CC
5402.49	Other	CC
5402.5	Other yarn, single, with a twist of exceeding 50 turns per metre:	
5402.51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CC
5402.52	Of polyesters	CC
5402.59	Other	CC
5402.6	Other yarn, multiple (folded) or cabled:	
5402.61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CC
5402.62	Of polyesters	CC
5402.69	Other	CC
5403	Artificial filament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 not put up for retail sale, including artificial monofilament of less than 67 decitex.	
5403.10	High tenacity yarn of viscose rayon	CC
5403.3	Other yarn, single:	
5403.31	Of viscose rayon, untwisted or with a twist not exceeding 120 turns per metre	CC
5403.32	Of viscose rayon, with a twist exceeding 120 turns per metre	CC
5403.33	Of cellulose acetate	CC
5403.39	Other	CC
5403.4	Other yarn, multiple (folded) or cabled:	
5403.41	Of viscose rayon	CC
5403.42	Of cellulose acetate	CC
5403.49	Other	CC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404	Synthetic monofilament of 67 decitex or more and of which no cross-sectional dimension exceeds 1 ㎜; strip and the like (for example, artificial straw) of synthetic textile materials of an apparent width not exceeding 5 ㎜.	
5404.1	Monofilament:	
5404.11	Elastomeric	CC
5404.12	Other, of polypropylene	CC
5404.19	Other	CC
5404.90	Other	CC
5405.00	Artificial monofilament of 67 decitex or more and of which no cross-sectional dimension exceeds 1 ㎜; strip and the like (for example, artificial straw) of artificial textile materials of an apparent width not exceeding 5 ㎜.	CC
5406.00	Man-made filament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 put up for retail sale.	CC
5407	Woven fabrics of synthetic filament yarn, including woven fabrics obtained from materials of heading 54.04.	
5407.10	Woven fabrics obtained from high tenacity yarn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or of polyester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407.20	Woven fabrics obtained from strip or the like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407.30	Fabrics specified in note 9 to section XI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407.4	Other woven fabrics, containing 85 % or more by weight of filaments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5407.41	Unbleached or bleach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407.42	Dy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407.43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407.44	Print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407.5	Other woven fabrics, containing 85 % or more by weight of textured polyester filaments:	
5407.51	Unbleached or bleach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407.52	Dy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407.53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407.54	Print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407.6	Other woven fabrics, containing 85 % or more by weight of polyester filaments:	
5407.61	Containing 85 % or more by weight of non-textured polyester filament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407.69	Other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407.7	Other woven fabrics, containing 85 % or more by weight of synthetic filaments:	
5407.71	Unbleached or bleach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407.72	Dy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407.73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407.74	Print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407.8	Other woven fabrics, containing less than 85 % by weight of synthetic filaments, mixed mainly or solely with cotton:	
5407.81	Unbleached or bleach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407.82	Dy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407.83	Of yarn of different colour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407.84	Print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407.9	Other woven fabrics:	
5407.91	Unbleached or bleach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407.92	Dy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407.93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407.94	Print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408	Woven fabrics of artificial filament yarn including woven fabrics obtained from materials of heading 54.05.	
5408.10	Woven fabrics obtained from high tenacity yarn of viscose rayon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408.2	Other woven fabrics, containing 85 % or more by weight of artificial filament or strip or the like:	
5408.21	Unbleached or bleach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408.22	Dy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408.23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408.24	Print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408.3	Other woven fabrics:	
5408.31	Unbleached or bleach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408.32	Dy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408.33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408.34	Print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5	CHAPTER 55 MAN-MADE STAPLE FIBRES	
5501	Synthetic filament tow.	
5501.1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CC
5501.20	Of polyesters	CC
5501.30	Acrylic or modacrylic	CC
5501.40	Of polypropylene	CC
5501.90	Other	CC
5502.00	Artificial filament tow.	CC
5503	Synthetic staple fibres, not carded, combed or otherwise processed for spinning.	
5503.1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5503.11	Of aramids	CC
5503.19	Other	CC
5503.20	Of polyesters	CC
5503.30	Acrylic or modacrylic	CC
5503.40	Of polypropylene	CC
5503.90	Other	CC
5504	Artificial staple fibres, not carded, combed or otherwise processed for spinning.	
5504.10	Of viscose rayon	CC
5504.90	Other	CC
5505	Waste (including noils,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of man-made fibres.	
5505.10	Of synthetic fibres	CTH
5505.20	Of artificial fibres	CTH
5506	Synthetic staple fibres, carded, combed or otherwise processed for spinning.	
5506.1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CC
5506.20	Of polyesters	CC
5506.30	Acrylic or modacrylic	CC
5506.90	Other	CC
5507.00	Artificial staple fibres, carded, combed or otherwise processed for spinning.	CC
5508	Sewing thread of man-made staple fibres, whether or not put up for retail sale.	
5508.10	Of synthetic staple fibres	CTH
5508.20	Of artificial staple fibres	CTH
5509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 of synthetic staple fibres, not put up for retail sale.	
5509.1	Containing 85 % or more by weight of staple fibres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5509.11	Single yarn	CTH
5509.12	Multiple (folded) or cabled yarn	CTH
5509.2	Containing 85 % or more by weight of polyester staple fibres:	
5509.21	Single yarn	CTH
5509.22	Multiple (folded) or cabled yarn	CTH
5509.3	Containing 85 % or more by weight of acrylic or modacrylic staple fibres:	
5509.31	Single yarn	CTH
5509.32	Multiple (folded) or cabled yarn	CTH
5509.4	Other yarn, containing 85 % or more by weight of synthetic staple fibres:	
5509.41	Single yarn	CTH
5509.42	Multiple (folded) or cabled yarn	CTH
5509.5	Other yarn, of polyester staple fibres:	
5509.51	Mixed mainly or solely with artificial staple fibres	CTH
5509.52	Mixed mainly or solely with wool or fine animal hair	CTH
5509.53	Mixed mainly or solely with cotton	CTH
5509.59	Other	CTH
5509.6	Other yarn, of acrylic or modacrylic staple fibres:	
5509.61	Mixed mainly or solely with wool or fine animal hair	CTH
5509.62	Mixed mainly or solely with cotton	CTH
5509.69	Other	CTH
5509.9	Other yarn:	
5509.91	Mixed mainly or solely with wool or fine animal hair	CTH
5509.92	Mixed mainly or solely with cotton	CTH
5509.99	Other	CTH
5510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 of artificial staple fibres, not put up for retail sale.	
5510.1	Containing 85 % or more by weight of artificial staple fibres:	
5510.11	Single yarn	CTH
5510.12	Multiple (folded) or cabled yarn	CTH
5510.20	Other yarn, mixed mainly or solely with wool or fine animal hair	CTH
5510.30	Other yarn, mixed mainly or solely with cotton	CTH
5510.90	Other yarn	CTH
5511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 of man-made staple fibres, put up for retail sale.	
5511.10	Of synthetic staple fibres, containing 85 % or more by weight of such fibres	CTH
5511.20	Of synthetic staple fibres, containing less than 85 % by weight of such fibres	CTH
5511.30	Of artificial staple fibres	CTH
5512	Woven fabrics of synthetic staple fibres, containing 85 % or more by weight of synthetic staple fibres.	
5512.1	Containing 85 % or more by weight of polyester staple fibr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512.11	Unbleached or bleach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2.19	Other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2.2	Containing 85 % or more by weight of acrylic or modacrylic staple fibres:	
5512.21	Unbleached or bleach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2.29	Other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2.9	Other:	
5512.91	Unbleached or bleach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2.99	Other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3	Woven fabrics of synthetic staple fibres, containing less than 85 % by weight of such fibres, mixed mainly or solely with cotton, of a weight not exceeding 170 g/m².	
5513.1	Unbleached or bleached: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513.11	Of polyester staple fibres, plain weave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3.12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of polyester staple fibre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3.13	Other woven fabrics of polyester staple fibre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3.19	Other woven fabric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3.2	Dyed:	
5513.21	Of polyester staple fibres, plain weave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3.23	Other woven fabrics of polyester staple fibre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3.29	Other woven fabric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3.3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513.31	Of polyester staple fibres, plain weave.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3.39	Other woven fabric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3.4	Printed:	
5513.41	Of polyester staple fibres, plain weave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3.49	Other woven fabric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4	Woven fabrics of synthetic staple fibres, containing less than 85 % by weight of such fibres, mixed mainly or solely with cotton, of a weight exceeding 170 g/m².	
5514.1	Unbleached or bleached:	
5514.11	Of polyester staple fibres, plain weave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4.12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of polyester staple fibre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514.19	Other woven fabric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4.2	Dyed:	
5514.21	Of polyester staple fibres, plain weave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4.22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of polyester staple fibre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4.23	Other woven fabrics of polyester staple fibre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4.29	Other woven fabric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4.30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4.4	Printed: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514.41	Of polyester staple fibres, plain weave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4.42	3-thread or 4-thread twill, including cross twill, of polyester staple fibre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4.43	Other woven fabrics of polyester staple fibre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4.49	Other woven fabric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5	Other woven fabrics of synthetic staple fibres.	
5515.1	Of polyester staple fibres:	
5515.11	Mixed mainly or solely with viscose rayon staple fibre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5.12	Mixed mainly or solely with man-made filament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5.13	Mixed mainly or solely with wool or fine animal hair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515.19	Other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5.2	Of acrylic or modacrylic staple fibres:	
5515.21	Mixed mainly or solely with man-made filament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5.22	Mixed mainly or solely with wool or fine animal hair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5.29	Other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5.9	Other woven fabrics:	
5515.91	Mixed mainly or solely with man-made filament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5.99	Other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6	Woven fabrics of artificial staple fibres.	
5516.1	Containing 85 % or more by weight of artificial staple fibr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516.11	Unbleached or bleach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6.12	Dy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6.13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6.14	Print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6.2	Containing less than 85 % by weight of artificial staple fibres, mixed mainly or solely with man-made filaments:	
5516.21	Unbleached or bleach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6.22	Dy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6.23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516.24	Print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6.3	Containing less than 85 % by weight of artificial staple fibres, mixed mainly or solely with wool or fine animal hair:	
5516.31	Unbleached or bleach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6.32	Dy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6.33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6.34	Print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6.4	Containing less than 85 % by weight of artificial staple fibres, mixed mainly or solely with cotton:	
5516.41	Unbleached or bleach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516.42	Dy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6.43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6.44	Print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6.9	Other:	
5516.91	Unbleached or bleach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6.92	Dy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6.93	Of yarns or different colour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516.94	Print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6	CHAPTER 56 WADDING, FELT AND NONWOVENS; SPECIAL YARNS; TWINE, CORDAGE, ROPES AND CABLES AND ARTICLES THEREOF	
5601	Wadding of textile materials and articles thereof; textile fibres, not exceeding 5 ㎜ in length (flock), textile dust and mill neps.	
5601.2	Wadding of textile materials and articles thereof:	
5601.21	Of cotton	CC
5601.22	Of man-made fibres	CC
5601.29	Other	CC
5601.30	Textile flock and dust and mill neps	CC
5602	Felt, whether or not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5602.10	Needleloom felt and stitch-bonded fibre fabrics	CC
5602.2	Other felt, not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5602.21	Of wool or fine animal hair	CC
5602.2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5602.90	Other	CC
5603	Nonwovens, whether or not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5603.1	Of man-made filaments:	
5603.11	Weighing not more than 25 g/㎡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603.12	Weighing more than 25 g/㎡ but not more than 70 g/㎡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603.13	Weighing more than 70 g/㎡ but not more than 150 g/㎡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603.14	Weighing more than 150 g/㎡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603.9	Other:	
5603.91	Weighing not more than 25 g/㎡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603.92	Weighing more than 25 g/m² but not more than 70 g/m²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603.93	Weighing more than 70 g/m² but not more than 150 g/m²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603.94	Weighing more than 150 g/m²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604	Rubber thread and cord, textile covered; textile yarn, and strip and the like of heading 54.04 or 54.05,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sheathed with rubber or plastics.	
5604.10	Rubber thread and cord, textile covered	**CC**
5604.90	Other	**CC**
5605.00	Metallised yarn, whether or not gimped, being textile yarn, or strip or the like of heading 54.04 or 54.05, combined with metal in the form of thread, strip or powder or covered with metal.	**CC**
5606.00	Gimped yarn, and strip and the like of heading 54.04 or 54.05, gimped (other than those of heading 56.05 and gimped horsehair yarn); chenille yarn (including flock chenille yarn); loop wale-yarn.	**CC**
5607	Twine, cordage, ropes and cables, whether or not plaited or braided and whether or not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sheathed with rubber or plastics.	
5607.2	Of sisal or other textile fibres of the genus agave:	
5607.21	Binder or baler twine	**CC**
5607.29	Other	**CC**
5607.4	Of polyethylene or polypropylene:	
5607.41	Binder or baler twine	**CC**
5607.49	Other	**CC**
5607.50	Of other synthetic fibres	**CC**
5607.90	Other	**CC**
5608	Knotted netting of twine, cordage or rope; made up fishing nets and other made up nets, of textile materials.	
5608.1	Of man-made textile materials:	
5608.11	Made up fishing nets	**CTH**
5608.19	Other	**CTH**
5608.90	Other	**CTH**
5609.00	Articles of yarn, strip or the like of heading 54.04 or 54.05, twine, cordage, rope or cabl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CTH**
57	CHAPTER 57 CARPETS AND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5701	Carpets and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knotted, whether or not made up.	
5701.1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CC**
5701.90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5702	Carpets and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woven, not tufted or flocked, whether or not made up, including "kelem", "schumacks", "karamanie" and similar hand-woven rugs.	
5702.10	"kelem", "schumacks", "karamanie" and similar hand-woven rugs	**CC**
5702.20	Floor coverings of coconut fibres (coir)	**CC**
5702.3	Other, of pile construction, not made up:	
5702.31	Of wool or fine animal hair	**CC**
5702.32	Of man-made textile materials	**CC**
5702.3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5702.4	Other, of pile construction, made up:	
5702.41	Of wool or fine animal hair	**CC**
5702.42	Of man-made textile materials	**CC**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702.4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5702.50	Other, not of pile construction, not made up	CC
5702.9	Other, not of pile construction, made up:	
5702.91	Of wool or fine animal hair	CC
5702.92	Of man-made textile materials	CC
5702.9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5703	Carpets and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tufted, whether or not made up.	
5703.1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CC
5703.2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CC
5703.30	Of other man-made textile materials	CC
5703.90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5704	Carpets and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of felt, not tufted or flocked, whether or not made up.	
5704.10	Tiles, having a maximum surface area of 0.3 m^2	CC except from heading 5602
5704.90	Other	CC except from heading 5602
5705.00	Other carpets and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whether or not made up.	CC
58	CHAPTER 58 SPECIAL WOVEN FABRICS; TUFTED TEXTILE FABRICS; LACE; TAPESTRIES; TRIMMINGS; EMBROIDERY	
5801	Woven pile fabrics and chenille fabrics, other than fabrics of heading 58.02 or 58.06.	
5801.1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801.2	Of cotton:	
5801.21	Uncut weft pile fabric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801.22	Cut corduroy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801.23	Other weft pile fabric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801.26	Chenille fabric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801.27	Warp pile fabric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801.3	Of man-made fibres:	
5801.31	Uncut weft pile fabric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801.32	Cut corduroy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801.33	Other weft pile fabric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801.36	Chenille fabric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801.37	Warp pile fabric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801.90	Of other textile material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802	Terry towelling and similar woven terry fabrics, other than narrow fabrics of heading 58.06; tufted textile fabrics, other than products of heading 57.03.	
5802.1	Terry towelling and similar woven terry fabrics, of cotton:	
5802.11	Unbleach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802.19	Other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802.20	Terry towelling and similar woven terry fabrics, of other textile material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802.30	Tufted textile fabric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803.00	Gauze, other than narrow fabrics of heading 58.06.	**CC**
5804	Tulles and other net fabrics, not including woven, knitted or crocheted fabrics; lace in the piece, in strips or in motifs, other than fabrics of headings 60.02 to 60.06.	
5804.10	Tulles and other net fabrics	**CC**
5804.2	Mechanically made lace:	
5804.21	Of man-made fibres	**CC**
5804.2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5804.30	Hand-made lace	**CC**
5805.00	Hand-woven tapestries of the type Gobelins, Flanders, Aubusson, Beauvais and the like, and needle-worked tapestries (for example, petit point, cross stitch), whether or not made up.	**CC**
5806	Narrow woven fabrics, other than goods of heading 58.07; narrow fabrics consisting of warp without weft assembled by means of an adhesive (bolducs).	
5806.10	Woven pile fabrics (including terry towelling and similar terry fabrics) and chenille fabrics	**CC**
5806.20	Other woven fabrics, containing by weight 5 % or more of elastomeric yarn or rubber thread	**CC**
5806.3	Other woven fabrics:	
5806.31	Of cotton	**CC**
5806.32	Of man-made fibres	**CC**
5806.3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5806.40	Fabrics consisting of warp without weft assembled by means of an adhesive (bolducs)	**CC**
5807	Labels, badges and similar articles of textile materials, in the piece, in strips or cut to shape or size, not embroidered.	
5807.10	Woven	**CC**
5807.90	Other	**CC**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808	Braids in the piece; ornamental trimmings in the piece, without embroidery, other than knitted or crocheted; tassels, pompons and similar articles.	
5808.10	Braids in the piece	CC
5808.90	Other	CC
5809.00	Woven fabrics of metal thread and woven fabrics of metallised yarn of heading 56.05, of a kind used in apparel, as furnishing fabrics or for similar purpos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5810	Embroidery in the piece, in strips or in motifs.	
5810.10	Embroidery without visible ground	CTH
5810.9	Other embroidery:	
5810.91	Of cotton	CTH
5810.92	Of man-made fibres	CTH
5810.9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TH
5811.00	Quilted textile products in the piece, composed of one or more layers of textile materials assembled with padding by stitching or otherwise, other than embroidery of heading 58.10.	CTH
59	CHAPTER 59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TEXTILE FABRICS; TEXTILE ARTICLES OF A KIND SUITABLE FOR INDUSTRIAL USE	
5901	Textile fabrics coated with gum or amylaceous substances, of a kind used for the outer covers of books or the like; tracing cloth; prepared painting canvas; buckram and similar stiffened textile fabrics of a kind used for hat foundations.	
5901.10	Textile fabrics coated with gum or amylaceous substances, of a kind used for the outer covers of books or the like	CC
5901.90	Other	CC
5902	Tyre cord fabric of high tenacity yarn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polyesters or viscose rayon.	
5902.10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CC
5902.20	Of polyesters	CC
5902.90	Other	CC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903	Textile fabrics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with plastic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59.02.	
5903.10	With poly (vinyl chloride)	CC
5903.20	With polyurethane	CC
5903.90	Other	CC
5904	Linoleum, whether or not cut to shape; floor coverings consisting of a coating or covering applied on a textile backing, whether or not cut to shape.	
5904.10	Linoleum	CC
5904.90	Other	CC
5905.00	Textile wall coverings.	CC
5906	Rubberised textile fabric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59.02.	
5906.10	Adhesive tape of a width not exceeding 20 cm	CC
5906.9	Other:	
5906.91	Knitted or crocheted	CC
5906.99	Other	CC
5907.00	Textile fabrics otherwise impregnated, coated or covered; painted canvas being theatrical scenery, studio back-cloths or the like.	CC
5908.00	Textile wicks, woven, plaited or knitted, for lamps, stoves, lighters, candles or the like; incandescent gas mantles and tubular knitted gas mantle fabric therefor, whether or not impregnated.	CC
5909.00	Textile hosepiping and similar textile tubing, with or without lining, armour or accessories of other materials.	CC
5910.00	Transmission or conveyor belts or belting, of textile material, whether or not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with plastics, or reinforced with metal or other material.	CC
5911	Textile products and articles, for technical uses, specified in Note 7 of this Chapter.	
5911.10	Textile fabrics, felt and felt-lined woven fabrics, coated, covered or laminated with rubber, leather or other material, of a kind used for card clothing, and similar fabrics of a kind used for other technical purposes, including narrow fabrics made of velvet impregnated with rubber, for covering weaving spindles (weaving beams)	CC
5911.20	Bolting cloth, whether or not made up	CC
5911.3	Textile fabrics and felts, endless or fitted with linking devices, of a kind used in paper-making or similar machines (for example, for pulp or asbestos-cement):	
5911.31	Weighing less than 650 g/m²	CC
5911.32	Weighing 650 g/m² or more	CC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5911.40	Straining cloth of a kind used in oil presses or the like, including that of human hair	CC
5911.90	Other	CC
60	CHAPTER 60 KNITTED OR CROCHETED FABRICS	
6001	Pile fabrics, including "long pile" fabrics and terry fabrics, knitted or crocheted.	
6001.10	"Long pile" fabric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001.2	Looped pile fabrics:	
6001.21	Of cotton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001.22	Of man-made fibre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001.2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001.9	Other:	
6001.91	Of cotton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001.92	Of man-made fibre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6001.9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002	Knitted or crocheted fabrics of a width not exceeding 30 cm, containing by weight 5 % or more of elastomeric yarn or rubber thread, other than those of heading 60.01.	
6002.40	Containing by weight 5 % or more of elastomeric yarn but not containing rubber threa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002.90	Other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003	Knitted or crocheted fabrics of a width not exceeding 30 cm, other than those of heading 60.01 or 60.02.	
6003.1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003.20	Of cotton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003.30	Of synthetic fibre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003.40	Of artificial fibre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6003.90	Other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004	Knitted or crocheted fabrics of a width exceeding 30 cm, containing by weight 5 % or more of elastomeric yarn or rubber thread, other than those of heading 60.01.	
6004.10	Containing by weight 5 % or more of elastomeric yarn but not containing rubber threa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004.90	Other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005	Warp knit fabrics (including those made on galloon knitting machines), other than those of headings 60.01 to 60.04.	
6005.2	Of cotton:	
6005.21	Unbleached or bleach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005.22	Dy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005.23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005.24	Print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6005.3	Of synthetic fibres:	
6005.31	Unbleached or bleach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005.32	Dy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005.33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005.34	Print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005.4	Of artificial fibres:	
6005.41	Unbleached or bleach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005.42	Dy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6005.43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005.44	Print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005.90	Other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006	Other Knitted or crocheted fabrics.	
6006.1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006.2	Of cotton:	
6006.21	Unbleached or bleach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006.22	Dy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6006.23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006.24	Print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006.3	Of synthetic fibres:	
6006.31	Unbleached or bleach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006.32	Dy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006.33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006.34	Print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006.4	Of artificial fibr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6006.41	Unbleached or bleach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006.42	Dy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006.43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006.44	Printed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006.90	Other	CTH, or a change from fabric that is constructed but not further prepared or finished provided that it is dyed or prin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1	CHAPTER 61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KNITTED OR CROCHETED	
6101	Men's or boys' overcoats, car-coats, capes, cloaks, anoraks (including ski-jackets), wind-cheaters, wind-jacket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other than those of heading 61.03.	
6101.20	Of cotton	CC
6101.30	Of man-made fibres	CC
6101.90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102	Women's or girls' overcoats, car-coats, capes, cloaks, anoraks (including ski-jackets), wind-cheaters, wind-jacket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other than those of heading 61.04.	
6102.1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CC
6102.20	Of cotton	CC
6102.30	Of man-made fibres	CC
6102.90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103	Men's or boys' suits, ensembles, jackets, blazers, trousers, bib and brace overalls, breeches and shorts (other than swimwear), knitted or crocheted.	
6103.10	Suits	CC
6103.2	Ensembles:	
6103.22	Of cotton	CC
6103.23	Of synthetic fibres	CC
6103.2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103.3	Jackets and blazers:	
6103.31	Of wool or fine animal hair	CC
6103.32	Of cotton	CC
6103.33	Of synthetic fibres	CC
6103.3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103.4	Trousers, bib and brace overalls, breeches and shorts:	
6103.41	Of wool or fine animal hair	CC
6103.42	Of cotton	CC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6103.43	Of synthetic fibres	CC
6103.4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104	Women's or girls' suits, ensembles, jackets, blazers dresses, skirts, divided skirts, trousers, bib and brace overalls, breeches and shorts (other than swimwear), knitted or crocheted.	
6104.1	Suits:	
6104.13	Of synthetic fibres	CC
6104.1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104.2	Ensembles:	
6104.22	Of cotton	CC
6104.23	Of synthetic fibres	CC
6104.2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104.3	Jackets and blazers:	
6104.31	Of wool or fine animal hair	CC
6104.32	Of cotton	CC
6104.33	Of synthetic fibres	CC
6104.3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104.4	Dresses:	
6104.41	Of wool or fine animal hair	CC
6104.42	Of cotton	CC
6104.43	Of synthetic fibres	CC
6104.44	Of artificial fibres	CC
6104.4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104.5	Skirts and divided skirts:	
6104.51	Of wool or fine animal hair	CC
6104.52	Of cotton	CC
6104.53	Of synthetic fibres	CC
6104.5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104.6	Trousers, bib and brace overalls, breeches and shorts:	
6104.61	Of wool or fine animal hair	CC
6104.62	Of cotton	CC
6104.63	Of synthetic fibres	CC
6104.6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105	Men's or boys' shirts, knitted or crocheted.	
6105.10	Of cotton	CC
6105.20	Of man-made fibres	CC
6105.90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106	Women's or girls' blouses, shirts and shirt-blouses, knitted or crocheted.	
6106.10	Of cotton	CC
6106.20	Of man-made fibres	CC
6106.90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107	Men's or boys' underpants, briefs, nightshirts, pyjamas, bathrobes, dressing gown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6107.1	Underpants and briefs:	
6107.11	Of cotton	CC
6107.12	Of man-made fibres	CC
6107.1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107.2	Nightshirts and pyjamas:	
6107.21	Of cotton	CC
6107.22	Of man-made fibres	CC
6107.2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107.9	Other:	
6107.91	Of cotton	CC
6107.9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108	Women's or girls' slips, petticoats, briefs, panties, nightdresses, pyjamas, négligés, bathrobes, dressing gown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6108.1	Slips and petticoats:	
6108.11	Of man-made fibres	CC
6108.1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108.2	Briefs and panties:	
6108.21	Of cotton	CC
6108.22	Of man-made fibres	CC
6108.2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108.3	Nightdresses and pyjamas:	
6108.31	Of cotton	CC
6108.32	Of man-made fibres	CC
6108.3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108.9	Other:	
6108.91	Of cotton	CC
6108.92	Of man-made fibres	CC
6108.9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109	T-shirts, singlets and other vests, knitted or crocheted.	
6109.10	Of cotton	CC
6109.90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110	Jerseys, pullovers, cardigans, waistcoat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6110.1	Of wool or fine animal hair:	
6110.11	Of wool	CC
6110.12	Of Kashmir (cashmere) goats	CC
6110.19	Other	CC
6110.20	Of cotton	CC
6110.30	Of man-made fibres	CC
6110.90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6111	Babies' garments and clothing accessories, knitted or crocheted.	
6111.20	Of cotton	CC
6111.30	Of synthetic fibres	CC
6111.90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112	Track suits, ski suits and swimwear, knitted or crocheted.	
6112.1	Track suit:	
6112.11	Of cotton	CC
6112.12	Of synthetic fibres	CC
6112.1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112.20	Ski suits	CC
6112.3	Men's or boys' swimwear:	
6112.31	Of synthetic fibres	CC
6112.3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112.4	Women's or girls' swimwear:	
6112.41	Of synthetic fibres	CC
6112.4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113.00	Garments, made up of knitted or crocheted fabrics of heading 59.03, 59.06 or 59.07.	CC
6114	Other garments, knitted or crocheted.	
6114.20	Of cotton	CC
6114.30	Of man-made fibres	CC
6114.90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115	Panty hose, tights, stockings, socks and other hosiery, including graduated compression hosiery (for example, stockings for varicose veins) and footwear without applied soles, knitted or crocheted.	
6115.10	Graduated compression hosiery (for example, stockings for varicose veins)	CC
6115.2	Other panty hose and tights:	
6115.21	Of synthetic fibres,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67 decitex	CC
6115.22	Of synthetic fibres, measuring per single yarn 67 decitex or more	CC
6115.2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115.30	Other women's full-length or knee-length hosiery,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67 decitex	CC
6115.9	Other:	
6115.94	Of wool or fine animal hair	CC
6115.95	Of cotton	CC
6115.96	Of synthetic fibres	CC
6115.9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116	Gloves, mittens and mitts, knitted or crocheted.	
6116.10	Impregnated, coated or covered with plastics or rubber	CC
6116.9	Other:	
6116.91	Of wool or fine animal hair	CC
6116.92	Of cotton	CC
6116.93	Of synthetic fibres	CC
6116.9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117	Other made up clothing accessories, knitted or crocheted; knitted or crocheted parts of garments or of clothing accessories.	
6117.10	Shawls, scarves, mufflers, mantillas, veils and the like	CC
6117.80	Other accessories	CC
6117.90	Parts	CC
62	CHAPTER 62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NOT KNITTED OR CROCHETED	
6201	Men's or boys' overcoats, car-coats, capes, cloaks, anoraks (including ski-jackets), wind-cheaters, wind-jackets and similar article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62.03.	
6201.1	Overcoats, raincoats, car-coats, capes, cloaks and similar articles:	
6201.11	Of wool or fine animal hair	CC
6201.12	Of cotton	CC
6201.13	Of man-made fibres	CC
6201.1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201.9	Other:	
6201.91	Of wool or fine animal hair	CC
6201.92	Of cotton	CC
6201.93	Of man-made fibres	CC
6201.9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202	Women's or girls' overcoats, car-coats, capes, cloaks, anoraks (including ski-jackets), wind-cheaters, wind-jackets and similar article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62.04.	
6202.1	Overcoats, raincoats, car-coats, capes, cloaks and similar articles:	
6202.11	Of wool or fine animal hair	CC
6202.12	Of cotton	CC
6202.13	Of man-made fibres	CC
6202.1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202.9	Other:	
6202.91	Of wool or fine animal hair	CC
6202.92	Of cotton	CC
6202.93	Of man-made fibres	CC
6202.9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6203	Men's or boys' suits, ensembles, jackets, blazers, trousers, bib and brace overalls, breeches and shorts (other than swimwear).	
6203.1	Suits:	
6203.11	Of wool or fine animal hair	CC
6203.12	Of synthetic fibres	CC
6203.19	Of other textile fibres	CC
6203.2	Ensembles:	
6203.22	Of cotton	CC
6203.23	Of synthetic fibres	CC
6203.2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203.3	Jackets and blazers:	
6203.31	Of wool or fine animal hair	CC
6203.32	Of cotton	CC
6203.33	Of synthetic fibres	CC
6203.3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203.4	Trousers, bib and brace overalls, breeches and shorts:	
6203.41	Of wool or fine animal hair	CC
6203.42	Of cotton	CC
6203.43	Of synthetic fibres	CC
6203.4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204	Women's or girls' suits, ensembles, jackets, blazers, dresses, skirts, divided skirts, trousers, bib and brace overalls, breeches and shorts (other than swimwear).	
6204.1	Suits:	
6204.11	Of wool or fine animal hair	CC
6204.12	Of cotton	CC
6204.13	Of synthetic fibres	CC
6204.1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204.2	Ensembles:	
6204.21	Of wool or fine animal hair	CC
6204.22	Of cotton	CC
6204.23	Of synthetic fibres	CC
6204.2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204.3	Jackets and blazers:	
6204.31	Of wool or fine animal hair	CC
6204.32	Of cotton	CC
6204.33	Of synthetic fibres	CC
6204.3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204.4	Dresses:	
6204.41	Of wool or fine animal hair	CC
6204.42	Of cotton	CC
6204.43	Of synthetic fibres	CC
6204.44	Of artificial fibres	CC
6204.4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204.5	Skirts and divided skirts:	
6204.51	Of wool or fine animal hair	CC
6204.52	Of cotton	CC
6204.53	Of synthetic fibres	CC
6204.5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204.6	Trousers, bib and brace overalls, breeches and shorts:	
6204.61	Of wool or fine animal hair	CC
6204.62	Of cotton	CC
6204.63	Of synthetic fibres	CC
6204.6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205	Men's or boys' shirts.	
6205.20	Of cotton	CC
6205.30	Of man-made fibres	CC
6205.90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206	Women's or girls' blouses, shirts and shirt-blouses.	
6206.10	Of silk or silk waste	CC
6206.2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CC
6206.30	Of cotton	CC
6206.40	Of man-made fibres	CC
6206.90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207	Men's or boys' singlets and other vests, underpants, briefs, nightshirts, pyjamas, bathrobes, dressing gowns and similar articles.	
6207.1	Underpants and briefs:	
6207.11	Of cotton	CC
6207.1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207.2	Nightshirts and pyjamas:	
6207.21	Of cotton	CC
6207.22	Of man-made fibres	CC
6207.2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207.9	Other:	
6207.91	Of cotton	CC
6207.9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208	Women's or girls' singlets and other vests, slips, petticoats, briefs, panties, nightdresses, pyjamas, négligés, bathrobes, dressing gowns and similar articles.	
6208.1	Slips and petticoats:	
6208.11	Of man-made fibres	CC
6208.1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208.2	Nightdresses and pyjamas:	
6208.21	Of cotton	CC
6208.22	Of man-made fibres	CC
6208.2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208.9	Other: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6208.91	Of cotton	CC
6208.92	Of man-made fibres	CC
6208.9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209	Babies' garments and clothing accessories.	
6209.20	Of cotton	CC
6209.30	Of synthetic fibres	CC
6209.90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210	Garments, made up of fabrics of heading 56.02, 56.03, 59.03, 59.06 or 59.07.	
6210.10	Of fabrics of heading 56.02 or 56.03	CC
6210.20	Other garments, of the type described in subheadings 6201.11 to 6201.19	CC
6210.30	Other garments, of the type described in subheading 6202.11 to 6202.19	CC
6210.40	Other men's or boys' garments	CC
6210.50	Other women's or girls' garments	CC
6211	Track suits, ski suits and swimwear; other garments.	
6211.1	Swimwear:	
6211.11	Men's or boys'	CC
6211.12	Women's or girls'	CC
6211.20	Ski suits	CC
6211.3	Other garments, men's or boys':	
6211.32	Of cotton	CC
6211.33	Of man-made fibres	CC
6211.3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211.4	Other garments, women's or girls':	
6211.42	Of cotton	CC
6211.43	Of man-made fibres	CC
6211.4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212	Brassiéres, girdles, corsets, braces, suspenders, garters and similar articles and parts thereof, whether or not knitted or crocheted.	
6212.10	Brassiéres	CC
6212.20	Girdles and panty-girdles	CC
6212.30	Corselettes	CC
6212.90	Other	CC
6213	Handkerchiefs.	
6213.20	Of cotton	CC
6213.90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214	Shawls, scarves, mufflers, mantillas, veils and the like.	
6214.10	Of silk or silk waste	CC
6214.20	Of wool or fine animal hair	CC
6214.30	Of synthetic fibres	CC
6214.40	Of artificial fibres	CC
6214.90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215	Ties, bow ties and cravats.	
6215.10	Of silk or silk waste	CC
6215.20	Of man-made fibres	CC
6215.90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216.00	Gloves, mittens and mitts.	CC
6217	Other made up clothing accessories; parts of garments or of clothing accessorie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62.12.	
6217.10	Accessories	CC
6217.90	Parts	CC
63	CHAPTER 63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SETS; WORN CLOTHING AND WORN TEXTILE ARTICLES; RAGS	
6301	Blankets and travelling rugs.	
6301.10	Electric blankets	CC provided that where the starting material is fabric, the fabric was greige fabric that is dyed or print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o render it directly usable.
6301.20	Blankets (other than electric blankets) and travelling rugs, of wool or fine animal hair	CC provided that where the starting material is fabric, the fabric was greige fabric that is dyed or print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o render it directly usable.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6301.30	Blankets (other than electric blankets) and travelling rugs, of cotton	CC provided that where the starting material is fabric, the fabric was greige fabric that is dyed or print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o render it directly usable.
6301.40	Blankets (other than electric blankets) and travelling rugs, of synthetic fibres	CC provided that where the starting material is fabric, the fabric was greige fabric that is dyed or print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o render it directly usable.
6301.90	Other blankets and travelling rugs	CC provided that where the starting material is fabric, the fabric was greige fabric that is dyed or print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o render it directly usable.
6302	Bed linen, table linen, toilet linen and kitchen linen.	
6302.10	Bed linen, knitted or crocheted	CC provided that where the starting material is fabric, the fabric was greige fabric that is dyed or print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o render it directly usable.
6302.2	Other bed linen, printed:	
6302.21	Of cotton	CC provided that where the starting material is fabric, the fabric was greige fabric that is dyed or print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o render it directly usable.
6302.22	Of man-made fibres	CC provided that where the starting material is fabric, the fabric was greige fabric that is dyed or print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o render it directly usable.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6302.2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provided that where the starting material is fabric, the fabric was greige fabric that is dyed or print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o render it directly usable.**
6302.3	Other bed linen:	
6302.31	Of cotton	**CC provided that where the starting material is fabric, the fabric was greige fabric that is dyed or print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o render it directly usable.**
6302.32	Of man-made fibres	**CC provided that where the starting material is fabric, the fabric was greige fabric that is dyed or print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o render it directly usable.**
6302.3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provided that where the starting material is fabric, the fabric was greige fabric that is dyed or print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o render it directly usable.**
6302.40	Table linen, knitted or crocheted	**CC provided that where the starting material is fabric, the fabric was greige fabric that is dyed or print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o render it directly usable.**
6302.5	Other table linen:	
6302.51	Of cotton	**CC provided that where the starting material is fabric, the fabric was greige fabric that is dyed or print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o render it directly usable.**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6302.53	Of man-made fibres	CC provided that where the starting material is fabric, the fabric was greige fabric that is dyed or print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o render it directly usable.
6302.5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provided that where the starting material is fabric, the fabric was greige fabric that is dyed or print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o render it directly usable.
6302.60	Toilet linen and kitchen linen, of terry towelling or similar terry fabrics, of cotton	CC provided that where the starting material is fabric, the fabric was greige fabric that is dyed or print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o render it directly usable.
6302.9	Other:	
6302.91	Of cotton	CC provided that where the starting material is fabric, the fabric was greige fabric that is dyed or print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o render it directly usable.
6302.93	Of man-made fibres	CC provided that where the starting material is fabric, the fabric was greige fabric that is dyed or print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o render it directly usable.
6302.9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provided that where the starting material is fabric, the fabric was greige fabric that is dyed or print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o render it directly usable.
6303	Curtains (including drapes) and interior blinds; curtain or bed valance.	
6303.1	Knitted or crocheted: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6303.12	Of synthetic fibres	**CC provided that where the starting material is fabric, the fabric was greige fabric that is dyed or print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o render it directly usable.**
6303.1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provided that where the starting material is fabric, the fabric was greige fabric that is dyed or print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o render it directly usable.**
6303.9	Other:	
6303.91	Of cotton	**CC provided that where the starting material is fabric, the fabric was greige fabric that is dyed or print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o render it directly usable.**
6303.92	Of synthetic fibres	**CC provided that where the starting material is fabric, the fabric was greige fabric that is dyed or print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o render it directly usable.**
6303.9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provided that where the starting material is fabric, the fabric was greige fabric that is dyed or print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o render it directly usable.**
6304	Other furnishing articles, excluding those of heading 94.04.	
6304.1	Bedspreads:	
6304.11	Knitted or crocheted	**CC provided that where the starting material is fabric, the fabric was greige fabric that is dyed or print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o render it directly usable.**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6304.19	Other	CC provided that where the starting material is fabric, the fabric was greige fabric that is dyed or print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o render it directly usable.
6304.9	Other:	
6304.91	Knitted or crocheted	CC provided that where the starting material is fabric, the fabric was greige fabric that is dyed or print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o render it directly usable.
6304.92	Not knitted or crocheted, of cotton	CC provided that where the starting material is fabric, the fabric was greige fabric that is dyed or print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o render it directly usable.
6304.93	Not knitted or crocheted, of synthetic fibres	CC provided that where the starting material is fabric, the fabric was greige fabric that is dyed or print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o render it directly usable.
6304.99	Not knitted or crocheted,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provided that where the starting material is fabric, the fabric was greige fabric that is dyed or print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to render it directly usable.
6305	Sacks and bags, of a kind used for the packing of goods.	
6305.10	Of jute or of other textile bast fibres of heading 53.03	CC
6305.20	Of cotton	CC
6305.3	Of man-made textile materials:	
6305.32	Flexible intermediate bulk containers	CC
6305.33	Other, of polyethylene or polypropylene strip or the like	CC
6305.39	Other	CC
6305.90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306	Tarpaulins, awnings and sunblinds; tents; sails for boats, sailboards or landcraft; camping goods.	
6306.1	Tarpaulins, awnings and sunblinds:	
6306.12	Of synthetic fibres	CC
6306.1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306.2	Tents:	
6306.22	Of synthetic fibres	CC
6306.29	Of other textile materials	CC
6306.30	Sails	CC
6306.40	Pneumatic mattresses	CC
6306.90	Other	CC
6307	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6307.10	Floor-cloths, dish-cloths, dusters and similar cleaning cloths	CC provided that where the starting material is fabric, the fabric is wholly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307.20	Life-jackets and life-belts	CC
6307.90	Other	CC provided that where the starting material is fabric, the fabric is wholly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308.00	Sets consisting of woven fabric and yarn, whether or not with accessories, for making up into rugs, tapestries, embroidered table cloths or serviettes, or similar textile articles, put up in packings for retail sale.	CC
6309.00	Worn clothing and other worn articles.	CTH
6310	Used or new rags, scrap twine cordage, rope and cables and worn out articles of twine, cordage, rope or cables, of textile materials.	
6310.10	Sorted	CTH
6310.90	Other	CTH
	SECTION XII FOOTWEAR, HEADGEAR, UMBRELLAS, SUN UMBRELLAS, WALKING-STICKS, SEAT-STICKS, WHIPS, RIDING-CROPS AND PARTS THEREOF; PREPARED FEATHERS AND ARTICLES MADE THEREWITH; ARTIFICIAL FLOWERS; ARTICLES OF HUMAN HAIR (Chapters 64 – 67)	
64	CHAPTER 64 FOOTWEAR, GAITERS AND THE LIKE; PARTS OF SUCH ARTICLES	
6401	Waterproof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rubber or of plastics, the uppers of which are neither fixed to the sole nor assembled by stitching, riveting, nailing, screwing, plugging or similar processes.	
6401.10	Footwear incorporating a protective metal toe-cap	CTH
6401.9	Other footwear:	
6401.92	Covering the ankle but not covering the knee	CTH
6401.99	Other	CTH
6402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rubber or plastics.	
6402.1	Sports footwear:	
6402.12	Ski-boots, cross-country ski footwear and snowboard boots	CTH
6402.19	Other	CTH
6402.20	Footwear with upper straps or thongs assembled to the sole by means of plugs	CTH
6402.9	Other footwear:	
6402.91	Covering the ankle	CTH
6402.99	Other	CTH
6403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plastics, leather or composition leather and uppers of leather.	
6403.1	Sports footwear:	
6403.12	Ski-boots, cross-country ski footwear and snowboard boots	CTH
6403.19	Other	CTH
6403.20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leather, and uppers which consist of leather straps across the instep and around the big toe	CTH
6403.40	Other footwear, incorporating a protective metal toe-cap	CTH
6403.5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leather:	
6403.51	Covering the ankle	CTH
6403.59	Other	CTH
6403.9	Other footwear:	
6403.91	Covering the ankle	CTH
6403.99	Other	CTH
6404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plastics, leather or composition leather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6404.1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or plastics:	
6404.11	Sports footwear; tennis shoes, basketball shoes, gym shoes, training shoes and the like	CTH
6404.19	Other	CTH
6404.20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leather or composition leather	CTH
6405	Other footwear.	
6405.10	With uppers of leather or composition leather	CTH
6405.20	With uppers of textile materials	CTH
6405.90	Other	CTH
6406	Parts of footwear (including uppers whether or not attached to soles other than outer soles); removable in-soles, heel cushions and similar articles; gaiters, leggings and similar articles, and parts thereof.	
6406.10	Uppers and parts thereof, other than stiffeners	CTH
6406.20	Outer soles and heels, of rubber or plastics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6406.90	Other	CTH
65	CHAPTER 65 HEADGEAR AND PARTS THEREOF	
6501.00	Hat-forms, hat bodies and hoods of felt, neither blocked to shape nor with made brims; plateaux and manchons (including slit manchons), of felt.	CTH
6502.00	Hat-shapes, plaited or made by assembling strips of any material, neither blocked to shape, nor with made brims, nor lined, nor trimmed.	CTH
6504.00	Hats and other headgear, plaited or made by assembling strips of any material, whether or not lined or trimmed.	CTH
6505.00	Hats and other headgear, knitted or crocheted, or made up from lace, felt or other textile fabric, in the piece (but not in strips), whether or not lined or trimmed; hair-nets of any material, whether or not lined or trimmed.	CTH
6506	Other headgear, whether or not lined or trimmed.	
6506.10	Safety headgear	CTH
6506.9	Other:	
6506.91	Of rubber or of plastics	CTH
6506.99	Of other materials	CTH
6507.00	Head-bands, lining, covers, hat foundations, hat frames, peaks and chinstraps, for headgear.	CTH
66	CHAPTER 66 UMBRELLAS, SUN UMBRELLAS, WALKING-STICKS, SEAT-STICKS, WHIPS, RIDING-CROPS, AND PARTS THEREOF	
6601	Umbrellas and sun umbrellas (including walking-stick umbrellas, garden umbrellas and similar umbrellas).	
6601.10	Garden or similar umbrellas	CTH
6601.9	Other:	
6601.91	Having a telescopic shaft	CTH
6601.99	Other	CTH
6602.00	Walking-sticks, seat-sticks, whips, riding-crops and the like.	CTH
6603	Parts, trimmings and accessories of articles of heading 66.01 or 66.02.	
6603.20	Umbrella frames, including frames mounted on shafts (sticks)	CC
6603.90	Other	CC
67	CHAPTER 67 PREPARED FEATHERS AND DOWN AND ARTICLES MADE OF FEATHERS OR OF DOWN; ARTIFICIAL FLOWERS; ARTICLES OF HUMAN HAIR	
6701.00	Skins and other parts of birds with their feathers or down, feathers, parts of feathers, down and articles thereof (other than goods of heading 05.05 and worked quills and scapes).	CTH
6702	Artificial flowers, foliage and fruit and parts-thereof; articles made of artificial flowers, foliage or fruit.	
6702.10	Of plastics	CTH
6702.90	Of other materials	CTH
6703.00	Human hair, dressed, thinned, bleached or otherwise worked; wool or other animal hair or other textile materials, prepared for use in making wigs or the like.	CTH
6704	Wigs, false beards, eyebrows and eyelashes, switches and the like, of human or animal hair or of textile materials; articles of human hair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6704.1	Of synthetic textile materials:	
6704.11	Complete wigs	CTH
6704.19	Other	CTH
6704.20	Of human hair	CTH
6704.90	Of other materials	CTH
	SECTION XIII ARTICLES OF STONE, PLASTER, CEMENT, ASBESTOS, MICA OR SIMILAR MATERIALS; CERAMIC PRODUCTS; GLASS AND GLASSWARE (Chapters 68 – 70)	
68	CHAPTER 68 ARTICLES OF STONE, PLASTER, CEMENT, ASBESTOS, MICA OR SIMILAR MATERIALS	
6801.00	Setts, curbstones and flagstones, of natural stone (except slate).	CTH
6802	Worked monumental or building stone (except slate) and articles thereof, other than goods of heading 68.01; mosaic cubes and the like, of natural stone (including slate), whether or not on a backing; artificially coloured granules, chipping and powder, of natural stone (including slate).	
6802.10	Tiles, cubes and similar articles, whether or not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the largest surface area of which is capable of being enclosed in a square the side of which is less than 7 cm; artificially coloured granules, chippings and powder	CTH
6802.2	Other monumental or building stone and articles thereof, simply cut or sawn, with a flat or even surface:	
6802.21	Marble, travertine and alabaster	CTH
6802.23	Granite	CTH
6802.29	Other stone	CTH
6802.9	Other:	
6802.91	Marble, travertine and alabaster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6802.92	Other calcareous stone	CTH
6802.93	Granite	CTH
6802.99	Other stone	CTH
6803.00	Worked slate and articles of slate or of agglomerated slate.	CTH
6804	Millstones, grindstones, grinding wheels and the like, without frameworks, for grinding, sharpening, polishing, trueing or cutting, hand sharpening or polishing stones, and parts thereof, of natural stone, of agglomerated natural or artificial abrasives, or of ceramics, with or without parts of other materials.	
6804.10	Millstones and grindstones for milling, grinding or pulping	CTH
6804.2	Other millstones, grindstones, grinding wheels and the like:	
6804.21	Of agglomerated synthetic or natural diamond	CTH
6804.22	Of other agglomerated abrasives or of ceramics	CTH
6804.23	Of natural stone	CTH
6804.30	Hand sharpening or polishing stones	CTH
6805	Natural or artificial, abrasive powder or grain, on a base of textile material, of paper, of paperboard or of other materials, whether or not cut to shape or sewn or otherwise made up.	
6805.10	On a base of woven textile fabric only	CTH
6805.20	On a base of paper or paperboard only	CTH
6805.30	On a base of other materials	CTH
6806	Slag wool, rock wool and similar mineral wools; exfoliated vermiculite, expanded clays foamed slag and similar expanded mineral materials; mixtures and articles of heat-insulating, sound-insulating or sound-absorbing mineral material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68.11 or 68.12 or of Chapter 69.	
6806.10	Slag wool, rock wool and similar mineral wools (including intermixtures thereof), in bulk, sheets or rolls	CTH
6806.20	Exfoliated vermiculite, expanded clays, foamed slag and similar expanded mineral materials (including intermixtures thereof)	CTH
6806.90	Other	CTH
6807	Articles of asphalt or of similar material (for example, petroleum bitumen or coal tar pitch).	
6807.10	In rolls	CTH
6807.90	Other	CTH
6808.00	Panels, boards, tiles, blocks and similar articles of vegetable fibre, of straw or of shavings, chips, particles, sawdust or other waste, of wood, agglomerated with cement, plaster or other mineral binders.	CTH
6809	Articles of plaster or of compositions based on plaster.	
6809.1	Boards, sheets, panels, tiles and similar articles, not ornamented:	
6809.11	Faced or reinforced with paper or paperboard only	CTH
6809.19	Other	CTH
6809.90	Other articles	CTH
6810	Articles of cement, of concrete or of artificial stone, whether or not reinforced.	
6810.1	Tiles, flagstones, bricks and similar articles:	
6810.11	Building blocks and bricks	CTH
6810.19	Other	CTH
6810.9	Other articles:	
6810.91	Prefabricated structural components for building or civil engineering	CTH
6810.99	Other	CTH
6811	Articles of asbestos-cement, of cellulose fibre-cement or the like.	
6811.40	Containing asbestos	CTH
6811.8	Not containing asbestos:	
6811.81	Corrugated sheets	CTH
6811.82	Other sheets, panels, tiles and similar articles	CTH
6811.89	Other articles	CTH
6812	Fabricated asbestos fibres; mixtures with a basis of asbestos or with a basis of asbestos and magnesium carbonate; articles of such mixtures or of asbestos (for example, thread, woven fabric, clothing, headgear, footwear, gaskets), whether or not reinforced, other than goods of heading 68.11 or 68.13.	
6812.80	Of crocidolite	CTSH
6812.9	Other:	
6812.91	Clothing, clothing accessories, footwear and headgear	CTSH
6812.92	Paper, millboard and felt	CTSH
6812.93	Compressed asbestos fibre jointing, in sheets or rolls	CTSH
6812.99	Other	CTSH
6813	Friction material and articles thereof (for example, sheets, rolls, strips, segments, discs, washers, pads), not mounted, for brakes, for clutches or the like, with a basis of asbestos, of other mineral substances or of cellulose, whether or not combined with textile or other materials.	
6813.20	Containing asbestos	CTH
6813.8	Not containing asbestos:	
6813.81	Brake linings and pads	CTH
6813.89	Other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6814	Worked mica and articles of mica, including agglomerated or reconstituted mica, whether or not on a support of paper, paperboard or other materials.	
6814.10	Plates, sheets and strips of agglomerated or reconstituted mica, whether or not on a support	CTH
6814.90	Other	CTH
6815	Articles of stone or of other mineral substances (including carbon fibres, articles of carbon fibres and articles of peat),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6815.10	Non-electrical articles of graphite or other carbon	CTH
6815.20	Articles of peat	CTH
6815.9	Other articles:	
6815.91	Containing magnesite, dolomite or chromite	CTH
6815.99	Other	CTH
69	CHAPTER 69 CERAMIC PRODUCTS	
6901.00	Bricks, blocks, tiles and other ceramic goods of siliceous fossil meals (for example, kieselguhr, tripolite or diatomite) or of similar siliceous earths.	CC
6902	Refractory bricks, blocks, tiles and similar refractory ceramic constructional goods, other than those of siliceous fossil meals or similar siliceous earths.	
6902.10	Containing by weight, singly or together, more than 50 % of the elements Mg, Ca or Cr, expressed as MgO, CaO or Cr2O3	CC
6902.20	Containing by weight more than 50 % of alumina (Al2O3), of silica(SiO2) or of a mixture or compound of these products	CC
6902.90	Other	CC
6903	Other refractory ceramic goods (for example, retorts, crucibles, muffles, nozzles, plugs, supports, cupels, tubes, pipes, sheaths and rods), other than those of siliceous fossil meals or of similar siliceous earths.	
6903.10	Containing by weight more than 50 % of graphite or other carbon or of a mixture of these products	CC
6903.20	Containing by weight more than 50 % of alumina(Al2O3) or of a mixture or compound of alumina and of silica(SiO2)	CC
6903.90	Other	CC
6904	Ceramic building bricks, flooring blocks, support or filler tiles and the like.	
6904.10	Building bricks	CC
6904.90	Other	CC
6905	Roofing tiles, chimney-pots, cowls, chimney liners, architectural ornaments and other ceramic constructional goods.	
6905.10	Roofing tiles	CC
6905.90	Other	CC
6906.00	Ceramic pipes, conduits, guttering and pipe fittings.	CC
6907	Unglazed ceramic flags and paving, hearth or wall tiles; unglazed ceramic mosaic cubes and the like, whether or not on a backing.	
6907.10	Tiles, cubes and similar articles, whether or not rectangular, the largest surface area of which is capable of being enclosed in a square the side of which is less than 7 cm	CC
6907.90	Other	CC
6908	Glazed ceramic flags and paving, hearth or wall tiles; glazed ceramic mosaic cubes and the like, whether or not on a backing.	
6908.10	Tiles, cubes and similar articles, whether or not rectangular, the largest surface area of which is capable of being enclosed in a square the side of which is less than 7 cm	CC or RVC(40)
6908.90	Other	CC or RVC(40)
6909	Ceramic wares for laboratory, chemical or other technical uses; ceramic troughs, tubs and similar receptacles of a kind used in agriculture; ceramic pots, jars and similar articles of a kind used for the conveyance or packing of goods.	
6909.1	Ceramic wares for laboratory, chemical or other technical uses:	
6909.11	Of porcelain or china	CC
6909.12	Articles having a hardness equivalent to 9 or more on the Mohs scale	CC
6909.19	Other	CC
6909.90	Other	CC
6910	Ceramic sinks, wash basins, wash basin pedestals, baths, bidets, water closet pans, flushing cisterns, urinals and similar sanitary fixtures.	
6910.10	Of porcelain or china	CC
6910.90	Other	CC
6911	Tableware, kitchenware, other household articles and toilet articles, of porcelain or china.	
6911.10	Tableware and kitchenware	CC
6911.90	Other	CC
6912.00	Ceramic tableware, kitchenware, other household articles and toilet articles, other than of porcelain or china.	CC
6913	Statuettes and other ornamental ceramic articles.	
6913.10	Of porcelain or china	CC
6913.90	Other	CC
6914	Other ceramic articl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6914.10	Of porcelain or china	CC
6914.90	Other	CC
70	CHAPTER 70 GLASS AND GLASSWARE	
7001.00	Cullet and other waste and scrap of glass; glass in the mass.	CTH
7002	Glass in balls (other than microspheres of heading 70.18), rods or tubes, unworked.	
7002.10	Balls	CTH
7002.20	Rods	CTH
7002.3	Tubes:	
7002.31	Of fused quartz or other fused silica	CTH
7002.32	Of other glass having a linear coefficient of expansion not exceeding 5×10-6 per Kelvin within a temperature range of 0℃ to 300℃	CTH
7002.39	Other	CTH
7003	Cast glass and rolled glass, in sheets or profiles, whether or not having an absorbent, reflecting or non-reflecting layer, but not otherwise worked.	
7003.1	Non-wired sheets:	
7003.12	Coloured throughout the mass (body tinted), opacified, flashed or having an absorbent, reflecting or non-reflecting layer	CTH
7003.19	Other	CTH
7003.20	Wired sheets	CTH
7003.30	Profiles	CTH
7004	Drawn glass and blown glass, in sheets, whether or not having an absorbent, reflecting or non-reflecting layer, but not otherwise worked.	
7004.20	Glass, coloured throughout the mass (body tinted), opacified, flashed or having an absorbent, reflecting or non-reflecting layer	CTH
7004.90	Other glass	CTH
7005	Float glass and surface ground or polished glass, in sheets, whether or not having an absorbent, reflecting or non-reflecting layer, but not otherwise worked.	
7005.10	Non-wired glass, having an absorbent, reflecting or non-reflecting layer	CTH
7005.2	Other non-wired glass:	
7005.21	Coloured throughout the mass (body tinted), opacified, flashed or merely surface ground	CTH
7005.29	Other	CTH
7005.30	Wired glass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7006.00	Glass of heading 70.03, 70.04 or 70.05, bent, edge-worked, engraved, drilled, enamelled or otherwise worked, but not framed or fitted with other materials.	CTH
7007	Safety glass, consisting of toughened (tempered) or laminated glass.	
7007.1	Toughened (tempered) safety glass:	
7007.11	Of size and shape suitable for incorporation in vehicles, aircraft, spacecraft or vessels	CTH
7007.19	Other	CTH
7007.2	Laminated safety glass:	
7007.21	Of size and shape suitable for incorporation in vehicles, aircraft, spacecraft or vessels	CTH
7007.29	Other	CTH
7008.00	Multiple-walled insulating units of glass.	CTH
7009	Glass mirrors, whether or not framed, including rear-view mirrors.	
7009.10	Rear-view mirrors for vehicles	CTSH
7009.9	Other:	
7009.91	Unframed	CTH
7009.92	Framed	CTH
7010	Carboys, bottles, flasks, jars, pots, phials, ampoules and other containers, of glass, of a kind used for the conveyance or packing of goods; preserving jars of glass; stoppers, lids and other closures, of glass.	
7010.10	Ampoules	CTH
7010.20	Stoppers, lids and other closures	CTH
7010.90	Other	CTH
7011	Glass envelopes (including bulbs and tubes), open, and glass parts thereof, without fittings, for electric lamps, cathode-ray tubes or the like.	
7011.10	For electric lighting	CTH
7011.20	For cathode-ray tubes	CTH
7011.90	Other	CTH
7013	Glassware of a kind used for table, kitchen, toilet, office, indoor decoration or similar purposes (other than that of heading 70.10 or 70.18).	
7013.10	Of glass-ceramics	CTH
7013.2	Stemware drinking glasses, other than of glass-ceramics:	
7013.22	Of lead crystal	CTH
7013.28	Other	CTH
7013.3	Other drinking glasses, other than of glass ceramics:	
7013.33	Of lead crystal	CTH
7013.37	Other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7013.4	Glassware of a kind used for table (other than drinking glasses) or kitchen purposes other than of glass-ceramics:	
7013.41	Of lead crystal	CTH
7013.42	Of glass having a linear coefficient of expansion not exceeding 5 x 10-6 per Kelvin within a temperature range of 0℃ to 300℃	CTH
7013.49	Other	CTH
7013.9	Other glassware:	
7013.91	Of lead crystal	CTH
7013.99	Other	CTH
7014.00	Signalling glassware and optical elements of glas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70.15), not optically worked.	CTH
7015	Clock or watch glasses and similar glasses, glasses for non-corrective or corrective spectacles, curved, bent, hollowed or the like, not optically worked; hollow glass spheres and their segments, for the manufacture of such glasses.	
7015.10	Glasses for corrective spectacles	CTH
7015.90	Other	CTH
7016	Paving blocks, slabs, bricks, squares, tiles and other articles of pressed or moulded glass, whether or not wired, of a kind used for building or construction purposes; glass cubes and other glass smallwares, whether or not on a backing, for mosaic or similar decorative purposes; leaded lights and the like; multicellular or foam glass in blocks, panels, plates, shells or similar forms.	
7016.10	Glass cubes and other glass smallwares, whether or not on a backing, for mosaics or similar decorative purposes	CTH
7016.90	Other	CTH
7017	Laboratory, hygienic or pharmaceutical glassware, whether or not graduated or calibrated.	
7017.10	Of fused quartz or other fused silica	CTH
7017.20	Of other glass having a linear coefficient of expansion not exceeding 5 x 10-6 per Kelvin within a temperature range of 0℃ to 300℃	CTH
7017.90	Other	CTH
7018	Glass beads, imitation pearls, imitation precious or semi-precious stones and similar glass smallwares, and articles thereof other than imitation jewellery; glass eyes other than prosthetic articles; statuettes and other ornaments of lamp-worked glass, other than imitation jewellery; glass microspheres not exceeding 1 ㎜ in diameter.	
7018.10	Glass beads, imitation pearls, imitation precious or semi-precious stones and similar glass smallwares	CTH
7018.20	Glass microspheres not exceeding 1 ㎜ in diameter	CTH
7018.90	Other	CTH
7019	Glass fibres (including glass wool) and articles thereof (for example, yarn, woven fabrics).	
7019.1	Slivers, rovings, yarn and chopped strands:	
7019.11	Chopped strands, of a length of not more than 50 ㎜	CTH
7019.12	Rovings	CTH
7019.19	Other	CTH
7019.3	Thin sheets (voiles), webs, mats, mattresses, boards and similar nonwoven products:	
7019.31	Mats	CTH
7019.32	Thin sheets (voiles)	CTH
7019.39	Other	CTH
7019.40	Woven fabrics of rovings	CTH
7019.5	Other woven fabrics:	
7019.51	Of a width not exceeding 30 ㎝	CTH
7019.52	Of a width exceeding 30 ㎝, plain weave, weighing less than 250 g/㎡, of filaments measuring per single yarn not more than 136 tex	CTH
7019.59	Other	CTH
7019.90	Other	CTH
7020.00	Other articles of glass.	CTH
	SECTION XIV NATURAL OR CULTURED PEARLS, PRECIOUS OR SEMI-PRECIOUS STONES, PRECIOUS METALS, METALS CLAD WITH PRECIOUS METAL AND ARTICLES THEREOF; IMITATION JEWELLERY; COIN (Chapter 71)	
71	CHAPTER 71 NATURAL OR CULTURED PEARLS, PRECIOUS OR SEMI-PRECIOUS STONES, PRECIOUS METALS, METALS CLAD WITH PRECIOUS METAL, AND ARTICLES THEREOF; IMITATION JEWELLERY; COIN	
7101	Pearls, natural or cultured, whether or not worked or graded but not strung, mounted or set; pearls, natural or cultured, temporarily strung for convenience of transport.	
7101.10	Natural pearls	CC
7101.2	Cultured pearls:	
7101.21	Unworked	CC
7101.22	Worked	CC
7102	Diamonds, whether or not worked, but not mounted or set.	
7102.10	unsorted	CC
7102.2	Industrial:	
7102.21	Unworked or simply sawn, cleaved or bruted	CC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7102.29	Other	CC
7102.3	Non-industrial:	
7102.31	Unworked or simply sawn, cleaved or bruted	CC
7102.39	Other	CC
7103	Precious stones (other than diamonds) and semi-precious stones, whether or not worked or graded but not strung, mounted or set; ungraded precious stones (other than diamonds) and semi-precious stones, temporarily strung for convenience of transport.	
7103.10	Unworked or simply sawn or roughly shaped	CC
7103.9	Otherwise worked:	
7103.91	Rubies, sapphires and emeralds	CC
7103.99	Other	CC
7104	Synthetic or reconstructed precious or semi-precious stones, whether or not worked or graded but not strung, mounted or set; ungraded synthetic or reconstructed precious or semi-precious stones, temporarily strung for convenience of transport.	
7104.10	Piezo-electric quartz	CTH
7104.20	Other, unworked or simply sawn or roughly shaped	CTH
7104.90	Other	CTH
7105	Dust and powder of natural or synthetic precious or semi-precious stones.	
7105.10	Of diamonds	CTH
7105.90	Other	CTH
7106	Silver (including silver plated with gold or platinum), unwrought or in semi-manufactured forms, or in powder form.	
7106.10	Powder	CC
7106.9	Other	
7106.91	Unwrought	CC
7106.92	Semi-manufactured	CC
7107.00	Base metals clad with silver, not further worked than semi-manufactured.	CC
7108	Gold (including gold plated with platinum) unwrought or in semi-manufactured forms, or in powder form.	
7108.1	Non-monetary:	
7108.11	Powder	CC
7108.12	Other unwrought forms	CC
7108.13	Other semi-manufactured forms	CC
7108.20	Monetary	CC
7109.00	Base metals or silver, clad with gold, not further worked than semi-manufactured.	CC
7110	Platinum, unwrought or in semi-manufactured forms, or in powder form.	
7110.1	Platinum:	
7110.11	Unwrought or in powder form	CC
7110.19	Other	CC
7110.2	Palladium:	
7110.21	Unwrought or in powder form	CC
7110.29	Other	CC
7110.3	Rhodium:	
7110.31	Unwrought or in powder form	CC
7110.39	Other	CC
7110.4	Iridium, osmium and ruthenuim:	
7110.41	Unwrought or in powder form	CC
7110.49	Other	CC
7111.00	Base metals, silver or gold, clad with platinum, not further worked than semi-manufactured.	CC
7112	Waste and scrap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s clad with precious metal; other waste and scrap containing precious metal or precious metal compounds, of a kind used principally for the recovery of precious metal.	
7112.30	Ash containing precious metal or precious metal compounds	CTH
7112.9	Other:	
7112.91	Of gold, including metal clad with gold but excluding sweepings containing other precious metals	CTH
7112.92	Of platinum, including metal clad with platinum but excluding sweepings containing other precious metals	CTH
7112.99	Other	CTH
7113	Articles of jewellery and parts thereof,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7113.1	Of precious metal whether or not plated or clad with precious metal:	
7113.11	Of silver, whether or not plated or clad with other precious metal	CTH
7113.19	Of other precious metal, whether or not plated or clad with precious metal	CTH
7113.20	Of base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CTH
7114	Articles of goldsmith's or silversmith's wares and parts thereof,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7114.1	Of precious metal whether or not plated or clad with precious metal:	
7114.11	Of silver, whether or not plated or clad with other precious metal	CTH
7114.19	Of other precious metal, whether or not plated or clad with precious metal	CTH
7114.20	Of base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7115	Other articles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7115.10	Catalysts in the form of wire cloth or grill, of platinum	CTH
7115.90	Other	CTH
7116	Articles of natural or cultured pearls, precious or semi-precious stones (natural, synthetic or reconstructed).	
7116.10	Of natural or cultured pearls	CTH
7116.20	Of precious or semi-precious stones (natural, synthetic or reconstructed)	CTH
7117	Imitation jewellery.	
7117.1	Of base metal, whether or not plated with precious metal:	
7117.11	Cuff-links and studs	CTH
7117.19	Other	CTH
7117.90	Other	CTH
7118	Coin	
7118.10	Coin (other than gold coin), not being legal tender	CTH
7118.90	Other	CTH
	SECTION XV BASE METALS AND ARTICLES OF BASE METAL (Chapters 72 – 83)	
72	CHAPTER 72 IRON AND STEEL	
7201	Pig iron and spiegeleisen in pigs, blocks or other primary forms.	
7201.10	Non-alloy pig iron containing by weight 0.5 % or less of phosphorus	CTH
7201.20	Non-alloy pig iron containing by weight more than 0.5 % of phosphorus	CTH
7201.50	Alloy pig iron; spiegeleisen	CTH
7202	Ferro-alloys.	
7202.1	Ferro-manganese:	
7202.11	Containing by weight more than 2 % of carbon.	CTH
7202.19	Other	CTH
7202.2	Ferro-silicon:	
7202.21	Containing by weight more than 55 % of silicon	CC
7202.29	Other	CTH
7202.30	Ferro-silico-manganese	CTH
7202.4	Ferro-chromium:	
7202.41	Containing by weight more than 4 % of carbon	CTH
7202.49	Other	CTH
7202.50	Ferro-silico-chromium	CC
7202.60	Ferro-nickel	CTH
7202.70	Ferro-molybdenum	CTH
7202.80	Ferro-tungsten and ferro-silico-tungsten	CC
7202.9	Other:	
7202.91	Ferro-titanium and ferro-silico-titanium	CTH
7202.92	Ferro-vanadium	CTH
7202.93	Ferro-niobium	CTH
7202.99	Other	CTH
7203	Ferrous products obtained by direct reduction of iron ore and other spongy ferrous products, in lumps, pellets or similar forms; iron having a minimum purity by weight of 99.94 %, in lumps, pellets or similar forms.	
7203.10	Ferrous products obtained by direct reduction of iron ore	CTH
7203.90	Other	CTH
7204	Ferrous waste and scrap; remelting scrap ingots of iron or steel.	
7204.10	Waste and scrap of cast iron	CTH
7204.2	Waste and scrap of alloy steel:	
7204.21	Of stainless steel	CTH
7204.29	Other	CTH
7204.30	Waste and scrap of tinned iron or steel	CTH
7204.4	Other waste and scrap:	
7204.41	Turnings, shavings, chips, milling waste, sawdust, filings, trimmings and stampings whether or not in bundles	CTH
7204.49	Other	CTH
7204.50	Remelting scrap ingots	CTH
7205	Granules and powders, of pig iron, spiegeleisen, iron or steel.	
7205.10	Granules	CTH
7205.2	Powders:	
7205.21	Of alloy steel	CTH
7205.29	Other	CTH
7206	Iron and non-alloy steel in ingots or other primary forms (excluding iron of heading 72.03).	
7206.10	Ingots	CTH
7206.90	Other	CTH
7207	Semi-finish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7207.1	Containing by weight less than 0.25 % of carbon:	
7207.11	Of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cross-section, the width measuring less than twice the thickness	CTH except from heading 7206
7207.12	Other, of rectangular (other than square)cross-section	CTH except from heading 7206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7207.19	Other	CTH except from heading 7206
7207.20	Containing by weight 0.25 % or more of carbon	CTH except from heading 7206
7208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of a width of 600 ㎜ or more, hot-rolled, not clad, plated or coated.	
7208.10	In coils,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with patterns in relief	CTH
7208.2	Other, in coils,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pickled:	
7208.25	Of a thickness of 4.75 ㎜ or more	CTH
7208.26	Of a thickness of 3 ㎜ or more but less than 4.75 ㎜	CTH
7208.27	Of a thickness of less than 3 ㎜	CTH
7208.3	Other, in coils,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7208.36	Of a thickness exceeding 10 ㎜	CTH
7208.37	Of a thickness of 4.75 ㎜ or more but not exceeding 10 ㎜	CTH
7208.38	Of a thickness of 3 ㎜ or more but less than 4.75 ㎜	CTH
7208.39	Of a thickness of less than 3 ㎜	CTH
7208.40	Not in coils,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with patterns in relief	CTH
7208.5	Other, not in coils,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7208.51	Of a thickness exceeding 10 ㎜	CTH
7208.52	Of a thickness of 4.75 ㎜ or more but not exceeding 10 ㎜	CTH
7208.53	Of a thickness of 3 ㎜ or more but less than 4.75 ㎜	CTH
7208.54	Of a thickness of less than 3 ㎜	CTH
7208.90	Other	CTH
7209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of a width of 600 ㎜ or more, cold-rolled (cold-reduced), not clad, plated or coated.	
7209.1	In coils, not further worked than cold-rolled (cold-reduced):	
7209.15	Of a thickness of 3 ㎜ or more	CTH except from headings 7208 or 7211
7209.16	Of a thickness exceeding 1 ㎜ but less than 3 ㎜	CTH except from headings 7208 or 7211
7209.17	Of a thickness of 0.5 ㎜ or more but not exceeding 1 ㎜	CTH except from headings 7208 or 7211
7209.18	Of a thickness of less than 0.5 ㎜	CTH except from headings 7208 or 7211
7209.2	Not in coils, not further worked than cold-rolled (cold-reduced):	
7209.25	Of a thickness of 3 ㎜ or more	CTH except from headings 7208 or 7211
7209.26	Of a thickness exceeding 1 ㎜ but less than 3 ㎜	CTH except from headings 7208 or 7211
7209.27	Of a thickness of 0.5 ㎜ or more but not exceeding 1 ㎜	CTH except from headings 7208 or 7211
7209.28	Of a thickness of less than 0.5 ㎜	CTH except from headings 7208 or 7211
7209.90	Other	CTH except from headings 7208 or 7211
7210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of a width of 600 ㎜ or more, clad, plated or coated.	
7210.1	Plated or coated with tin:	
7210.11	Of a thickness of 0.5 ㎜ or more	CTH except from heading 7208, 7209 or 7211
7210.12	Of a thickness of less than 0.5 ㎜	CTH except from heading 7208, 7209 or 7211
7210.20	Plated or coated with lead, including terne-plate	CTH except from heading 7208, 7209 or 7211
7210.30	Electrolytically plated or coated with zinc	CTH except from heading 7208, 7209 or 7211
7210.4	Otherwise plated or coated with zinc:	
7210.41	Corrugated	CTH except from heading 7208, 7209 or 7211
7210.49	Other	CTH except from heading 7208, 7209 or 7211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7210.50	Plated or coated with chromium oxides or with chromium and chromium oxides	CTH except from heading 7208, 7209 or 7211
7210.6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	
7210.61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zinc alloys	CTH except from heading 7208, 7209 or 7211
7210.69	Other	CTH except from heading 7208, 7209 or 7211
7210.70	Painted, varnished or coated with plastics	CTH except from heading 7208, 7209 or 7211
7210.90	Other	CTH except from heading 7208, 7209 or 7211
7211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of a width of less than 600 ㎜, not clad, plated or coated.	
7211.1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7211.13	Rolled on four faces or in a closed box pass, of a width exceeding 150 ㎜ and a thickness of not less than 4 ㎜, not in coils and without patterns in relief	CTH except from headings 7208 or 7209
7211.14	Other, of a thickness of 4.75 ㎜ or more	CTH except from headings 7208 or 7209
7211.19	Other	CTH except from headings 7208 or 7209
7211.2	Not further worked than cold-rolled(cold-reduced):	
7211.23	Containing by weight less than 0.25 % of carbon	CTH except from headings 7208 or 7209
7211.29	Other	CTH except from headings 7208 or 7209
7211.90	Other	CTH except from headings 7208 or 7209
7212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of a width of less than 600 ㎜, clad, plated or coated.	
7212.10	Plated or coated with tin	CTH except from headings 7208 to 7211
7212.20	Electrolytically plated or coated with zinc	CTH except from headings 7208 to 7211
7212.30	Otherwise plated or coated with zinc	CTH except from headings 7208 to 7211
7212.40	Painted, varnished or coated with plastics	CTH except from headings 7208 to 7211
7212.50	Otherwise plated or coated	CTH except from headings 7208 to 7211
7212.60	Clad	CTH except from headings 7208 to 7211
7213	Bars and rods, hot-rolled, in irregularly wound coils, of iron or non-alloy steel.	
7213.10	Containing indentations, ribs, grooves or other deformations produced during the rolling process	CTH
7213.20	Other, of free-cutting steel	CTH
7213.9	Other:	
7213.91	Of circular cross-section measuring less than 14 ㎜ in diameter	CTH
7213.99	Other	CTH
7214	Other bars and rods of iron or non-alloy steel, not further worked than forged, hot-rolled, hot-drawn or hot-extruded, but including those twisted after rolling.	
7214.10	Forged	CTH except from heading 7213
7214.20	Containing indentations, ribs, grooves or other deformations produced during the rolling process or twisted after rolling	CTH except from heading 7213
7214.30	Other, of free-cutting steel	CTH except from heading 7213
7214.9	Other:	
7214.91	Of rectangular (other than square)cross-section	CTH except from heading 7213
7214.99	Other	CTH except from heading 7213
7215	Other bars and rods of iron or non-alloy steel.	
7215.10	Of free-cutting steel, not further worked than cold-formed or cold-finished	CTH except from headings 7213 or 7214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7215.50	Other, not further worked than cold-formed or cold-finished	CTH except from headings 7213 or 7214
7215.90	Other	CTH except from headings 7213 or 7214
7216	Angles, shapes and sections of iron or non-alloy steel.	
7216.10	U, I or H sections,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hot-drawn or extruded, of a height of less than 80 ㎜	CTH
7216.2	L or T sections,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hot-drawn or extruded, of a height of less than 80 ㎜:	
7216.21	L sections	CTH
7216.22	T sections	CTH
7216.3	U, I or H sections,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hot-drawn or extruded of a height of 80 ㎜ or more:	
7216.31	U sections	CTH
7216.32	I sections	CTH
7216.33	H sections	CTH
7216.40	L or T sections,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hot-drawn or extruded, of a height of 80 ㎜ or more	CTH
7216.50	Other angles, shapes and sections,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hot-drawn or extruded	CTH
7216.6	Angles, shapes and sections, not further worked than cold-formed or cold-finished:	
7216.61	Obtained from flat-rolled products	CTH
7216.69	Other	CTH
7216.9	Other:	
7216.91	Cold-formed or cold-finished from flat-rolled products	CTH
7216.99	Other	CTH
7217	Wire or iron of non-alloy steel.	
7217.10	Not plated or coated, whether or not polished	CTH except from headings 7213 to 7215
7217.20	Plated or coated with zinc	CTH except from headings 7213 to 7215
7217.30	Plated or coated with other base metals	CTH except from headings 7213 to 7215
7217.90	Other	CTH except from headings 7213 to 7215
7218	Stainless steel in ingots or other primary forms; semi-finish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7218.10	Ingots and other primary forms	CTH
7218.9	Other:	
7218.91	Of rectangular (other than square) cross-section	CTH
7218.99	Other	CTH
7219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of a width of 600 ㎜ or more.	
7219.1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in coils:	
7219.11	Of a thickness exceeding 10 ㎜	CTSH
7219.12	Of a thickness of 4.75 ㎜ or more but not exceeding 10 ㎜	CTSH
7219.13	Of a thickness of 3 ㎜ or more but less than 4.75 ㎜	CTSH
7219.14	Of a thickness of less than 3 ㎜	CTSH
7219.2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not in coils:	
7219.21	Of a thickness exceeding 10 ㎜	CTSH
7219.22	Of a thickness of 4.75 ㎜ or more but not exceeding 10 ㎜	CTSH
7219.23	Of a thickness of 3 ㎜ or more but less than 4.75 ㎜	CTSH
7219.24	Of a thickness of less than 3 ㎜	CTSH
7219.3	Not further worked than cold-rolled (cold-reduced):	
7219.31	Of a thickness of 4.75 ㎜ or more	CTSH
7219.32	Of a thickness of 3 ㎜ or more but less than 4.75 ㎜	CTSH
7219.33	Of a thickness exceeding 1 ㎜ but less than 3 ㎜	CTSH
7219.34	Of a thickness of 0.5 ㎜ or more but not exceeding 1 ㎜	CTSH
7219.35	Of a thickness of less than 0.5 ㎜	CTSH
7219.90	Other	CTSH
7220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of a width of less than 600 ㎜.	
7220.1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7220.11	Of a thickness of 4.75 ㎜ or more	CTSH
7220.12	Of a thickness of less than 4.75 ㎜	CTSH
7220.20	Not further worked than cold-rolled (cold-reduced)	CTSH
7220.90	Other	CTSH
7221.00	Bars and rods, hot-rolled, in irregularly wound coils, of stainless steel.	CTH
7222	Other bars and rods of stainless steel; angles, shapes and sections of stainless steel.	
7222.1	Bars and rods,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hot-drawn or extruded:	
7222.11	Of circular cross-section	CTH
7222.19	Other	CTH
7222.20	Bars and rods, not further worked than cold-formed or cold-finished	CTH
7222.30	Other bars and rods	CTH
7222.40	Angles, shapes and sections	CTH
7223.00	Wire of stainless steel.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7224	Other alloy steel in ingots or other primary forms; semi-finished products of other alloy steel.	
7224.10	Ingots and other primary forms	CTH
7224.90	Other	CTH
7225	Flat-rolled products of other alloy steel, of a width of 600 ㎜ or more.	
7225.1	Of silicon-electrical steel:	
7225.11	Grain-oriented	CTH
7225.19	Other	CTH
7225.30	Other,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in coils	CTH
7225.40	Other,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not in coils	CTH
7225.50	Other, not further worked than cold-rolled (cold-reduced)	CTH
7225.9	Other:	
7225.91	Electrolytically plated or coated with zinc	CTH
7225.92	Otherwise plated or coated with zinc	CTH
7225.99	Other	CTH
7226	Flat-rolled products of other alloy steel, of a width of less than 600 ㎜.	
7226.1	Of silicon-electrical steel:	
7226.11	Grain-oriented	CTH
7226.19	Other	CTH
7226.20	Of high speed steel	CTH
7226.9	Other:	
7226.91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CTH
7226.92	Not further worked than cold-rolled (cold-reduced)	CTH
7226.99	Other	CTH
7227	Bars and rods, hot-rolled, in irregularly wound coils, of other alloy steel.	
7227.10	Of high speed steel	CTH
7227.20	Of silico-manganese steel	CTH
7227.90	Other	CTH
7228	Other bars and rods of other alloy steel; angles, shapes and sections, of other alloy steel; hollow drill bars and rods, of alloy or non-alloy steel.	
7228.10	Bars and rods, of high speed steel	CTH
7228.20	Bars and rods, of silico-manganese steel	CTH
7228.30	Other bars and rods,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hot-drawn or extruded	CTH
7228.40	Other bars and rods, not further worked than forged	CTH
7228.50	Other bars and rods, not further worked than cold-formed or cold-finished	CTH
7228.60	Other bars and rods	CTH
7228.70	Angles, shapes and sections	CTH
7228.80	Hollow drill bars and rods	CTH
7229	Wire of other alloy steel.	
7229.20	Of silico-manganese steel	CTH
7229.90	Other	CTH
73	CHAPTER 73 ARTICLES OF IRON OR STEEL	
7301	Sheet piling of iron or steel, whether or not drilled, punched or made from assembled elements; welded angles, shapes and sections, of iron or steel.	
7301.10	Sheet piling	CTH
7301.20	Angles, shapes and sections	CTH
7302	Railway or tramway track construction material of iron or steel, the following; rails, check-rails and rack rails, switch blades, crossing frogs, point rods and other crossing pieces, sleepers (cross-ties), fish-plates, chairs, chair-wedges, sole plates (base plates), rail clips, bedplates, ties and other material specialized for jointing or fixing rails.	
7302.10	Rails	CTH
7302.30	Switch blades, crossing frogs, point rods and other crossing pieces	CTH
7302.40	Fish-plates and sole plates	CTH
7302.90	Other	CTH
7303.00	Tubes, pipes and hollow profiles, of cast iron.	CTH
7304	Tubes, pipes and hollow profiles, seamless, of iron (other than cast iron)or steel.	
7304.1	Line pipe of a kind used for oil or gas pipelines:	
7304.11	Of stainless steel	CTH
7304.19	Other	CTH
7304.2	Casing, tubing and drill pipe, of a kind used in drilling for oil or gas:	
7304.22	Drill pipe of stainless steel	CTH
7304.23	Other drill pipe	CTH
7304.24	Other, of stainless steel	CTH
7304.29	Other	CTH
7304.3	Other, of circular cross-section, of iron or non-alloy steel:	
7304.31	Cold-drawn or cold-rolled (cold-reduced)	CTH
7304.39	Other	CTH
7304.4	Other, of circular cross-section, of stainless steel:	
7304.41	Cold-drawn or cold-rolled (cold-reduced)	CTH
7304.49	Other	CTH
7304.5	Other, of circular cross-section, of other alloy steel:	
7304.51	Cold-drawn or cold-rolled(cold-reduced)	CTH
7304.59	Other	CTH
7304.90	Other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7305	Other tubes and pipes (for example, welded, riveted or similarly closed), having circular cross-section, the external diameter of which exceeds 406.4 ㎜, of iron or steel.	
7305.1	Line pipe of a kind used for oil or gas pipelines:	
7305.11	Longitudinally submerged arc welded	CTH
7305.12	Other, longitudinally welded	CTH
7305.19	Other	CTH
7305.20	Casing of a kind used in drilling for oil or gas	CTH
7305.3	Other, welded:	
7305.31	Longitudinally welded	CTH
7305.39	Other	CTH
7305.90	Other	CTH
7306	Other tubes, pipes and hollow profiles (for example, open seam or welded, riveted or similarly closed), of iron or steel.	
7306.1	Line pipe of a kind used for oil or gas pipe-lines:	
7306.11	Welded, of stainless steel	CTH
7306.19	Other	CTH
7306.2	Casing and tubing of a kind used in drilling for oil or gas:	
7306.21	Welded, of stainless steel	CTH
7306.29	Other	CTH
7306.30	Other, welded, of circular cross-section, of iron or non-alloy steel	CTH
7306.40	Other, welded, of circular cross-section, of stainless steel	CTH
7306.50	Other, welded, of circular cross-section, of other alloy steel	CTH
7306.6	Other, welded, of non-circular cross-section:	
7306.61	Of square or rectangular cross-section	CTH
7306.69	Of other non-circular cross-section	CTH
7306.90	Other	CTH
7307	Tube or pipe fittings (for example, couplings, elbows, sleeves), of iron or steel.	
7307.1	Cast fittings:	
7307.11	Of non-malleable cast iron	CC or RVC(40)
7307.19	Other	CC or RVC(40)
7307.2	Other, of stainless steel:	
7307.21	Flanges	CC or RVC(40)
7307.22	Threaded elbows, bends and sleeves	CC or RVC(40)
7307.23	Butt welding fittings	CC or RVC(40)
7307.29	Other	CC or RVC(40)
7307.9	Other:	
7307.91	Flanges	CC or RVC(40)
7307.92	Threaded elbows, bends and sleeves	CC or RVC(40)
7307.93	Butt welding fittings	CC or RVC(40)
7307.99	Other	CC or RVC(40)
7308	Structures (excluding prefabricated buildings of heading 94.06) and parts, of structures (for example, bridges and bridge-sections, lock-gates, towers, lattice masts, roofs, roofing frame-works, doors and windows and their frames and thresholds for doors, shutters, balustrades, pillars and columns), of iron or steel; plates, rods, angles, shapes, sections, tubes and the like, prepared for use in structures, of iron or steel.	
7308.10	Bridges and bridge-sections	CTH
7308.20	Towers and lattice masts	CTH
7308.30	Doors, windows and their frames and thresholds for doors	CTH
7308.40	Equipment for scaffolding, shuttering, propping or pitpropping	CTH
7308.90	Other	CTH
7309.00	Reservoirs, tanks, vats and similar containers for any material (other than compressed or liquefied gas), of iron or steel, of a capacity exceeding 300 ℓ, whether or not lined or heat-insulated, but not fitted with mechanical or thermal equipment.	CTH
7310	Tanks, casks, drums, cans, boxes and similar containers, for any material (other than compressed or liquefied gas), of iron or steel, of a capacity not exceeding 300 ℓ, whether or not lined or heat-insulated, but not fitted with mechanical or thermal equipment.	
7310.10	Of a capacity of 50 ℓ or more	CTH
7310.2	Of a capacity of less than 50 ℓ:	
7310.21	Cans which are to be closed by soldering or crimping	CTH
7310.29	Other	CTH
7311.00	Containers for compressed or liquefied gas, of iron or steel.	CTH
7312	Stranded wire, ropes, cables, plaited bands, slings and the like, of iron or steel, not electrically insulated.	
7312.10	Stranded wire, ropes and cables	CTH
7312.90	Other	CTH
7313.00	Barbed wire of iron or steel; twisted hoop or single flat wire, barbed or not, and loosely twisted double wire, of a kind used for fencing, of iron or steel.	CTH
7314	Cloth (including endless bands), grill, netting and fencing, of iron or steel wire; expanded metal of iron or steel.	
7314.1	Woven cloth:	
7314.12	Endless bands for machinery, of stainless steel	CTH
7314.14	Other woven cloth, of stainless steel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7314.19	Other	CTH
7314.20	Grill, netting and fencing, welded at the intersection, of wire with a maximum cross-sectional dimension of 3 ㎜ or more and having a mesh size of 100 ㎠ or more	CTH
7314.3	Other grill, netting and fencing, welded at the intersection:	
7314.31	Plated or coated with zinc	CTH
7314.39	Other	CTH
7314.4	Other cloth, grill, netting and fencing:	
7314.41	Plated or coated with zinc	CTH
7314.42	Coated with plastics	CTH
7314.49	Other	CTH
7314.50	Expanded metal	CTH
7315	Chain and parts thereof, of iron or steel.	
7315.1	Articulated link chain and parts thereof:	
7315.11	Roller chain	CTH, or a change from subheading 7315.19 and RVC(40)
7315.12	Other chain	CTH, or a change from subheading 7315.19 and RVC(40)
7315.19	Parts	CTH
7315.20	Skid chain	CTH, or a change from subheading 7315.90 and RVC(40)
7315.8	Other chain:	
7315.81	Stud-link	CTH, or a change from subheading 7315.90 and RVC(40)
7315.82	Other, welded link	CTH, or a change from subheading 7315.90 and RVC(40)
7315.89	Other	CTH, or a change from subheading 7315.90 and RVC(40)
7315.90	Other parts	CTH
7316.00	Anchors, grapnels and parts thereof, of iron or steel.	CTH
7317.00	Nails, tacks, drawing pins, corrugated nails, staple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83.05) and similar articles, of iron or steel, whether or not with heads of other material, but excluding such articles with heads of copper.	CTH
7318	Screws, bolts, nuts, coach screws, screw hooks, rivets, cotters, cotter-pins, washers (including spring washers) and similar articles, of iron or steel.	
7318.1	Threaded articles:	
7318.11	Coach screws	CTH
7318.12	Other wood screws	CTH
7318.13	Screw hooks and screw rings	CTH
7318.14	Self-tapping screws	CTH
7318.15	Other screws and bolts, whether or not with their nuts of washers	CTH
7318.16	Nuts	CTH
7318.19	Other	CTH
7318.2	Non-threaded articles:	
7318.21	Spring washers and other lock washers	CTH
7318.22	Other washers	CTH
7318.23	Rivets	CTH
7318.24	Cotters and cotter-pins	CTH
7318.29	Other	CTH
7319	Sewing needles, knitting needles, bodkins, crochet hooks, embroidery stilettos and similar articles, for use in the hand, of iron or steel; safety pins and other pins of iron or steel,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7319.40	Safety pins and other pins	CTH
7319.90	Other	CTH
7320	Springs and leaves for springs, of iron or steel.	
7320.10	Leaf-springs and leaves thereof	CTH or RVC(40)
7320.20	Helical springs	CTH or RVC(40)
7320.90	Other	CTH or RVC(40)
7321	Stoves, ranges, grates, cookers (including those with subsidiary boilers for central heating), barbecues, braziers, gas-rings, plate warmers and similar non-electric domestic appliances, and parts thereof, of iron or steel.	
7321.1	Cooking appliances and plate warmers:	
7321.11	For gas fuel or for both gas and other fuels	CTSH
7321.12	For liquid fuel	CTSH
7321.19	Other, including appliances for solid fuel	CTSH
7321.8	Other appliances;	
7321.81	For gas fuel or for both gas and other fuels	CTS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7321.82	For liquid fuel	CTSH
7321.89	Other, including appliances for solid fuel	CTSH
7321.90	Parts	CTH or RVC(40)
7322	Radiators for central heating, not electrically heated, and parts thereof, of iron or steel; air heaters and hot air distributors (including distributors which can also distribute fresh or conditioned air), not electrically heated, incorporating a motor-driven fan or blower, and parts thereof, of iron or steel.	
7322.1	Radiators and parts thereof:	
7322.11	Of cast iron	CTH or RVC(40)
7322.19	Other	CTH or RVC(40)
7322.90	Other	CTH or RVC(40)
7323	Table, kitchen or other household articles and parts thereof, of iron or steel; iron or steel wool; pot scourers and scouring or polishing pads, gloves and the like, of iron or steel.	
7323.10	Iron or steel wool; pot scourers and scouring or polishing pads, gloves and the like	CTH
7323.9	Other:	
7323.91	Of cast iron, not enamelled	CTH
7323.92	Of cast iron, enamelled	CTH
7323.93	Of stainless steel	CTH
7323.94	Of iron (other than cast iron) or steel, enamelled	CTH
7323.99	Other	CTH
7324	Sanitary ware and parts thereof, of iron or steel.	
7324.10	Sinks and wash basins, of stainless steel	CTH or RVC(40)
7324.2	Baths;	
7324.21	Of cast iron, whether or not enamelled	CTH or RVC(40)
7324.29	Other	CTH or RVC(40)
7324.90	Other, including parts	CTH
7325	Other cast articles of iron or steel.	
7325.10	Of non-malleable cast iron	CTH
7325.9	Other:	
7325.91	Grinding balls and similar articles for mills	CTH
7325.99	Other	CTH
7326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7326.1	Forged or stamped, but not further worked:	
7326.11	Grinding balls and similar articles for mills	CTH
7326.19	Other	CTH
7326.20	Articles of iron or steel wire	CTH
7326.90	Other	CTH
74	CHAPTER 74 COPPER AND ARTICLES THEREOF	
7401.00	Copper mattes; cement copper (precipitated copper).	CTH
7402.00	Unrefined copper; copper anodes for electrolytic refining.	CTH
7403	Refined copper and copper alloys, unwrought.	
7403.1	Refined copper:	
7403.11	Cathodes and sections of cathodes	CTH
7403.12	Wire-bars	CTH
7403.13	Billets	CTH
7403.19	Other	CTH
7403.2	Copper alloys:	
7403.21	Copper-zinc base alloys (brass)	CTH
7403.22	Copper-tin base alloys (bronze)	CTH
7403.29	Other copper alloys (other than master alloys of heading 74.05)	CTH
7404.00	Copper waste and scrap.	CTH
7405.00	Master alloys of copper.	CTH
7406	Copper powders and flakes.	
7406.10	Powders of non-lamellar structure	CTH
7406.20	Powders of lamellar structure; flakes	CTH
7407	Copper bars, rods and profiles.	
7407.10	Of refined copper	CTH
7407.2	Of copper alloys:	
7407.21	Of copper-zinc base alloys (brass)	CTH
7407.29	Other	CTH
7408	Copper wire.	
7408.1	Of refined copper:	
7408.11	Of which the maximum cross-sectional dimension exceeds 6 ㎜	CTH except from heading 7407
7408.19	Other	CTH except from heading 7407
7408.2	Of copper alloys:	
7408.21	Of copper-zinc base alloys (brass)	CTH except from heading 7407
7408.22	Of copper-nickel base alloys (cupro-nickel) or copper-nickel-zinc base alloys (nickel silver)	CTH except from heading 7407
7408.29	Other	CTH except from heading 7407
7409	Copper plates, sheets and strip, of a thickness exceeding 0.15 ㎜.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7409.1	Of refined copper:	
7409.11	In coils	CTH
7409.19	Other	CTH
7409.2	Of copper-zinc base alloys (brass):	
7409.21	In coils	CTH
7409.29	Other	CTH
7409.3	Of copper-tin base alloys (bronze):	
7409.31	In coils	CTH
7409.39	Other	CTH
7409.40	Of copper-nickel base alloys (cupro-nickel) or copper-nickel-zinc base alloys (nickel silver)	CTH
7409.90	Of other copper alloys	CTH
7410	Copper foil (whether or not printed or backed with paper, paperboard, plastics or similar backing materials) of a thickness (excluding any backing) not exceeding 0.15 ㎜.	
7410.1	Not backed:	
7410.11	Of refined copper	CTH except from heading 7409
7410.12	Of copper alloys	CTH except from heading 7409
7410.2	Backed:	
7410.21	Of refined copper	CTH except from heading 7409
7410.22	Of copper alloys	CTH except from heading 7409
7411	Copper tubes and pipes.	
7411.10	Of refined copper	CTH
7411.2	Of copper alloys:	
7411.21	Of copper-zinc base alloys (brass)	CTH
7411.22	Of copper-nickel base alloys (cupro-nickel) or copper-nickel-zinc base alloys (nickel silver)	CTH
7411.29	Other	CTH
7412	Copper tube or pipe fittings (for example, couplings, elbows, sleeves).	
7412.10	Of refined copper	CTH except from heading 7411
7412.20	Of copper alloys	CTH except from heading 7411
7413.00	Stranded wire, cable, plaited bands and the like, of copper, not electrically insulated	CTH
7415	Nails, tacks, drawing pins, staple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83.05) and similar articles, of copper or of iron or steel with heads of copper; screws, bolts, nuts, screw hooks, rivets, cotters, cotter-pins, washers (including spring washers) and similar articles, of copper.	
7415.10	Nails and tacks, drawing pins, staples and similar articles	CTH
7415.2	Other articles, not threaded:	
7415.21	Washers (including spring washers)	CTH
7415.29	Other	CTH
7415.3	Other threaded articles:	
7415.33	Screws; bolts and nuts	CTH
7415.39	Other	CTH
7418	Table, kitchen or other household articles and parts thereof, of copper; pot scourers and scouring or polishing pads, gloves and the like, of copper; sanitary ware and parts thereof, of copper.	
7418.10	Table, kitchen or other household articles and parts thereof; pot scourers and scouring or polishing pads, gloves and the like:	CTH
7418.20	Sanitary ware and parts thereof	CTH
7419	Other articles of copper.	
7419.10	Chain and parts thereof	CTSH
7419.9	Other:	
7419.91	Cast, moulded, stamped or forged, but not further worked	CTSH
7419.99	Other	CTSH
75	CHAPTER 75 NICKEL AND ARTICLES THEREOF	
7501	Nickel mattes, nickel oxide sinters and other intermediate products of nickel metallurgy.	
7501.10	Nickel mattes	CTH
7501.20	Nickel oxide sinters and other intermediate products of nickel metallurgy	CTH
7502	Unwrought nickel.	
7502.10	Nickel, not alloyed	CTH
7502.20	Nickel alloys	CTH
7503.00	Nickel waste and scrap.	CTH
7504.00	Nickel powders and flakes.	CTH
7505	Nickel bars, rods, profiles and wire.	
7505.1	Bars, rods and profiles:	
7505.11	Of nickel, not alloyed	CTH
7505.12	Of nickel alloys	CTH
7505.2	Wire:	
7505.21	Of nickel, not alloyed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7505.22	Of nickel alloys	CTH
7506	Nickel plates, sheets, strip and foil.	
7506.10	Of nickel, not alloyed	CTH or RVC(40)
7506.20	Of nickel alloys	CTH or RVC(40)
7507	Nickel tubes, pipes and tube or pipe fittings(for example, couplings, elbows, sleeves).	
7507.1	Tubes and pipes:	
7507.11	Of nickel, not alloyed	CTH
7507.12	Of nickel alloys	CTH
7507.20	Tube or pipe fittings	CTH
7508	Other articles of nickel.	
7508.10	Cloth, grill and netting, of nickel wire	CTH
7508.90	Other	CTH
76	CHAPTER 76 ALUMINIUM AND ARTICLES THEREOF	
7601	Unwrought aluminium.	
7601.10	Aluminium, not alloyed	CTH
7601.20	Aluminium alloys	CTH
7602.00	Aluminium waste and scrap.	CTH
7603	Aluminium powders and flakes.	
7603.10	Powders of non-lamellar structure	CTH
7603.20	Powders of lamellar structure; flakes	CTH
7604	Aluminium bars, rods and profiles.	
7604.10	Of aluminium, not alloyed	CTH
7604.2	Of aluminium alloys:	
7604.21	Hollow profiles	CTH
7604.29	Other	CTH
7605	Aluminium wire.	
7605.1	Of aluminium, not alloyed:	
7605.11	Of which the maximum cross-sectional dimension exceeds 7 ㎜	CTH except from heading 7604
7605.19	Other	CTH except from heading 7604
7605.2	Of aluminium alloys:	
7605.21	Of which the maximum cross-sectional dimension exceeds 7 ㎜	CTH except from heading 7604
7605.29	Other	CTH except from heading 7604
7606	Aluminium plates, sheets and strip, of a thickness exceeding 0.2 ㎜.	
7606.1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7606.11	Of aluminium, not alloyed	CTH
7606.12	Of aluminium alloys	CTH
7606.9	Other:	
7606.91	Of aluminium, not alloyed	CTH
7606.92	Of aluminium alloys	CTH
7607	Aluminium foil (whether or not printed or backed with paper, paperboard, plastics or similar backing materials)of a thickness (excluding any backing) not exceeding 0.2 ㎜.	
7607.1	Not backed:	
7607.11	Rolled but not further worked	CTH
7607.19	Other	CTH
7607.20	Backed	CTH
7608	Aluminium tubes and pipes.	
7608.10	Of aluminium, not alloyed	CTH
7608.20	Of aluminium alloys	CTH
7609.00	Aluminium tube or pipe fittings (for example, couplings, elbows, sleeves).	CTH except from heading 7608
7610	Aluminium structures (excluding prefabricated buildings of heading 94.06) and parts of structures (for example, bridges and bridge-sections, towers, lattice masts, roofs, roofing frameworks, doors and windows and their frames and thresholds for doors, balustrades, pillars and columns); aluminium plates, rods, profiles, tubes and the like, prepared for use in structures.	
7610.10	Doors, windows and their frames and thresholds for doors	CTH
7610.90	Other	CTH
7611.00	Aluminium reservoirs, tanks, vats and similar containers, for any material (other than compressed or liquefied gas), of a capacity exceeding 300 ℓ, whether or not lined or heat-insulated, but not fitted with mechanical or thermal equipment.	CTH
7612	Aluminium casks, drums, cans, boxes and similar containers (including rigid or collapsible tubular containers), for any material (other than compressed or liquefied gas), of a capacity not exceeding 300 ℓ, whether or not lined or heat-insulated, but not fitted with mechanical or thermal equipment.	
7612.10	Collapsible tubular containers	CTH
7612.90	Other	CTH
7613.00	Aluminium containers for compressed or liquefied gas.	CTH
7614	Stranded wire, cables, plaited bands and the like, of aluminium, not electrically insulated.	
7614.10	With steel core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7614.90	Other	**CTH except from headings 7604 or 7605**
7615	Table, kitchen or other household articles and parts thereof, of aluminium; pot scourers and scouring or polishing pads, gloves and the like, of aluminium; sanitary ware and parts thereof, of aluminium.	
7615.10	Table, kitchen or other household articles and parts thereof; pot scourers and scouring or polishing pads, gloves and the like:	**CTH**
7615.20	Sanitary ware and parts thereof	**CTH**
7616	Other articles of aluminium.	
7616.10	Nails, tacks, staple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83.05), screws, bolts, nuts, screw hooks, rivets, cotters, cotter-pins, washers and similar articles	**CTH**
7616.9	Other:	
7616.91	Cloth, grill, netting and fencing, of aluminium wire	**CTSH**
7616.99	Other	**CTSH**
78	CHAPTER 78 LEAD AND ARTICLES THEREOF	
7801	Unwrought lead.	
7801.10	Refined lead	**CTH**
7801.9	Other:	
7801.91	Containing by weight antimony as the principal other element	**CTH**
7801.99	Other	**CTH**
7802.00	Lead waste and scrap.	**CTH**
7804	Lead plates, sheets, strip and foil; lead powders and flakes.	
7804.1	Plates, sheets, strip and foil:	
7804.11	Sheets, strip and foil of a thickness (excluding any backing) not exceeding 0.2 ㎜	**CTH**
7804.19	Other	**CTH**
7804.20	Powders and flakes	**CTH**
7806.00	Other articles of lead.	**CTH or RVC(40)**
79	CHAPTER 79 ZINC AND ARTICLES THEREOF	
7901	Unwrought zinc.	
7901.1	Zinc, not alloyed:	
7901.11	Containing by weight 99.99 % or more of zinc	**CTH**
7901.12	Containing by weight less than 99.99 % of zinc	**CTH**
7901.20	Zinc alloys	**CTH**
7902.00	Zinc waste and scrap.	**CTH**
7903	Zinc dust, powders and flakes.	
7903.10	Zinc dust	**CTH**
7903.90	Other	**CTH**
7904.00	Zinc bars, rods, profiles and wire.	**CTH**
7905.00	Zinc plates, sheets, strip and foil.	**CTH**
7907.00	Other articles of zinc.	**CTH or RVC(40)**
80	CHAPTER 80 TIN AND ARTICLES THEREOF	
8001	Unwrought tin.	
8001.10	Tin, not alloyed	**CTH**
8001.20	Tin alloys	**CTH**
8002.00	Tin waste and scrap.	**CTH**
8003.00	Tin bars, rods, profiles and wire.	**CTH**
8007.00	Other articles of tin.	**CTH or RVC(40)**
81	CHAPTER 81 OTHER BASE METALS; CERMETS; ARTICLES THEREOF	
8101	Tungsten (wolfram)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	
8101.10	Powders	**CTSH**
8101.9	Other:	
8101.94	Unwrought tungsten, including bars and rods obtained simply by sintering	**CTSH**
8101.96	Wire	**CTSH**
8101.97	Waste and scrap	**CTSH**
8101.99	Other	**CTSH**
8102	Molybdenum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	
8102.10	Powders	**CTSH**
8102.9	Other:	
8102.94	Unwrought molybdenum, including bars and rods obtained simply by sintering	**CTSH**
8102.95	Bars and rods, other than those obtained simply by sintering, profiles, plates, sheets, strip and foil	**CTSH**
8102.96	Wire	**CTSH**
8102.97	Waste and scrap	**CTSH**
8102.99	Other	**CTSH**
8103	Tantalum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	
8103.20	Unwrought tantalum, including bars and rods obtained simply by sintering; powders	**CTSH**
8103.30	Waste and scrap	**CTSH**
8103.90	Other	**CTSH**
8104	Magnesium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	
8104.1	Unwrought magnesium:	
8104.11	Containing at least 99.8 % by weight of magnesium	**CTS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104.19	Other	CTSH
8104.20	Waste and scrap	CTSH
8104.30	Raspings, turnings and granules, graded according to size; powders	CTSH
8104.90	Other	CTSH
8105	Cobalt mattes and other intermediate products of cobalt metallurgy; cobalt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	
8105.20	Cobalt mattes and other intermediate products of cobalt metallurgy; unwrought cobalt; powders	CTSH
8105.30	Waste and scrap	CTSH
8105.90	Other	CTSH
8106.00	Bismuth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	CTH or RVC(40)
8107	Cadmium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	
8107.20	Unwrought cadmium; powders	CTSH
8107.30	Waste and scrap	CTSH
8107.90	Other	CTSH
8108	Titanium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	
8108.20	Unwrought titanium; powders	CTSH
8108.30	Waste and scrap	CTSH
8108.90	Other	CTSH
8109	Zirconium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	
8109.20	Unwrought zirconium; powders	CTSH
8109.30	Waste and scrap	CTSH
8109.90	Other	CTSH
8110	Antimony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	
8110.10	Unwrought antimony; powders	CTSH
8110.20	Waste and scrap	CTSH
8110.90	Other	CTSH
8111.00	Manganese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	CTH or RVC(40)
8112	Beryllium, chromium, germanium, vanadium, gallium, hafnium, indium, niobium (columbium), rhenium and thallium, and articles of these metals, including waste and scrap.	
8112.1	Beryllium:	
8112.12	Unwrought; powders	CTSH
8112.13	Waste and scrap	CTSH
8112.19	Other	CTSH
8112.2	Chromium:	
8112.21	Unwrought; powders	CTSH
8112.22	Waste and scrap	CTSH
8112.29	Other	CTSH
8112.5	Thallium:	
8112.51	Unwrought; powders	CTSH
8112.52	Waste and scrap	CTSH
8112.59	Other	CTSH
8112.9	Other:	
8112.92	Unwrought; waste and scrap; powders	CTSH
8112.99	Other	CTSH
8113.00	Cermets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	CTH or RVC(40)
82	CHAPTER 82 TOOLS, IMPLEMENTS, CUTLERY, SPOONS AND FORKS, OF BASE METAL; PARTS THEREOF OF BASE METAL	
8201	Hand tools, the following: spades, shovels, mattocks, picks, hoes, forks and rakes; axes, bill hooks and similar hewing tools; secateurs and pruners of any kind; scythes, sickles, hay knives, hedge shears, timber wedges and other tools of a kind used in agriculture, horticulture or forestry.	
8201.10	Spades and shovels	CC
8201.30	Mattocks, picks, hoes and rakes	CC
8201.40	Axes, bill hooks and similar hewing tools	CC
8201.50	Secateurs and similar one-handed pruners and shears (including poultry shears)	CC
8201.60	Hedge shears, two-handed pruning shears and similar two-handed shears	CC
8201.90	Other hand tools of a kind used in agriculture, horticulture or forestry	CC
8202	Hand saws; blades for saws of all kinds (including slitting, slotting or toothless saw blades).	
8202.10	Hand saws	CC or RVC(40)
8202.20	Band saw blades	CC or RVC(40)
8202.3	Circular saw blades (including slitting or slotting saw blades):	
8202.31	With working part of steel	CC or RVC(40)
8202.39	Other, including parts	CC or RVC(40)
8202.40	Chain saw blades	CC or RVC(40)
8202.9	Other saw blades:	
8202.91	Straight saw blades, for working metal	CC or RVC(40)
8202.99	Other	CC or RVC(40)
8203	Files, rasps, pliers (including cutting pliers), pincers, tweezers, metal cutting shears, pipe-cutters, bolt croppers, perforating punches and similar hand tools.	
8203.10	Files, rasps and similar tools	CC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203.20	Pliers (including cutting pliers), pincers, tweezers and similar tools	CC
8203.30	Metal cutting shears and similar tools	CC
8203.40	Pipe-cutters, bolt croppers, perforating punches and similar tools	CC
8204	Hand-operated spanners and wrenches (including torque meter wrenches but not including tap wrenches); interchangeable spanner sockets, with or without handles.	
8204.1	Hand-operated spanners and wrenches:	
8204.11	Non-adjustable	CC
8204.12	Adjustable	CC
8204.20	Interchangeable spanner sockets, with or without handles	CC
8205	Hand tools (including glaziers' diamond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blow lamps; vices, clamps and the like, other than accessories for and parts of, machine tools; anvils; portable forges; hand or pedal-operated grinding wheels with frameworks.	
8205.10	Drilling, threading or tapping tools	CC
8205.20	Hammers and sledge hammers	CC
8205.30	Planes, chisels, gouges and similar cutting tools for working wood	CC
8205.40	Screwdrivers	CC
8205.5	Other hand tools (including glaziers' diamonds):	
8205.51	Household tools	CC
8205.59	Other	CC
8205.60	Blow lamps	CC
8205.70	Vices, clamps and the like	CC
8205.90	Other, including sets of articles of two or more subheadings of this heading	CC
8206.00	Tools of two or more of the headings 82.02 to 82.05, put up in sets for retail sale.	CC
8207	Interchangeable tools for hand tools, whether or not power-operated, or for machine-tools (for example, for pressing, stamping, punching, tapping, threading, drilling, boring, broaching, milling, turning or screw driving), including dies for drawing or extruding metal, and rock drilling or earth boring tools.	
8207.1	Rock drilling or earth boring tools:	
8207.13	With working part of cermets	CC or RVC(40)
8207.19	Other, including parts	CC or RVC(40)
8207.20	Dies for drawing or extruding metal	CC or RVC(40)
8207.30	Tools for pressing, stamping or punching	CC or RVC(40)
8207.40	Tools for tapping or threading	CC or RVC(40)
8207.50	Tools for drilling, other than for rock drilling	CC or RVC(40)
8207.60	Tools for boring or broaching	CC or RVC(40)
8207.70	Tools for milling	CC or RVC(40)
8207.80	Tools for turning	CC or RVC(40)
8207.90	Other interchangeable tools	CC or RVC(40)
8208	Knives and cutting blades, for machines or for mechanical appliances.	
8208.10	For metal working	CC
8208.20	For wood working	CC
8208.30	For kitchen appliances or for machines used by the food industry	CC
8208.40	For agricultural, horticultural or forestry machines	CC
8208.90	Other	CC
8209.00	Plates, sticks, tips and the like for tools, unmounted, of cermets.	CC
8210.00	Hand-operated mechanical appliances, weighing 10 kg or less, used in the preparation, conditioning or serving of food or drink.	CC or RVC(40)
8211	Knives with cutting blades, serrated or not (including pruning knives), other than knives of heading 82.08, and blades therefor.	
8211.10	Sets of assorted articles	CC
8211.9	Other:	
8211.91	Table knives having fixed blades	CC or RVC(40)
8211.92	Other knives having fixed blades	CC or RVC(40)
8211.93	Knives having other than fixed blades	CC or RVC(40)
8211.94	Blades	CC
8211.95	Handles of base metal	CC
8212	Razors and razor blades (including razor blade blanks in strips).	
8212.10	Razors	CC or RVC(40)
8212.20	Safety razor blades, including razor blade blanks in strips	CC or RVC(40)
8212.90	Other parts	CC or RVC(40)
8213.00	Scissors, tailors' shears and similar shears, and blades therefor.	CC
8214	Other articles of cutlery (for example, hair clippers, butchers' or kitchen cleavers, choppers and mincing knives, paper knives); manicure or pedicure sets and instruments (including nail files).	
8214.10	Paper knives, letter openers, erasing knives, pencil sharpeners and blades therefor	CC
8214.20	Manicure or pedicure sets and instruments (including nail files)	CC
8214.90	Other	CC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215	Spoons, forks, ladles, skimmers, cake-servers, fish-knives, butter-knives, sugar tongs and similar kitchen or tableware.	
8215.10	Sets of assorted articles containing at least one article plated with precious metal	CC
8215.20	Other sets of assorted articles	CC
8215.9	Other:	
8215.91	Plated with precious metal	CC
8215.99	Other	CC
83	CHAPTER 83 MISCELLANEOUS ARTICLES OF BASE METAL	
8301	Padlocks and locks (key, combination or electrically operated), of base metal; clasps and frames with clasps, incorporating locks, of base metal; keys for any of the foregoing articles, of base metal.	
8301.10	Padlocks	CC or RVC(40)
8301.20	Locks of a kind used for motor vehicles	CC or RVC(40)
8301.30	Locks of a kind used for furniture	CC or RVC(40)
8301.40	Other locks	CC or RVC(40)
8301.50	Clasps and frames with clasps, incorporating locks	CC or RVC(40)
8301.60	Parts	CC or RVC(40)
8301.70	Keys presented separately	CC or RVC(40)
8302	Base metal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furniture, doors, staircases, windows, blinds, coachwork, saddlery, trunks, chests, caskets or the like; base metal hat-racks, hat-pegs, brackets and similar fixtures; castors with mountings of base metal; automatic door closers of base metal.	
8302.10	Hinges	CTH
8302.20	Castors	CTH
8302.30	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motor vehicles	CTH
8302.4	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8302.41	Suitable for buildings	CTH
8302.42	Other, suitable for furniture	CTH
8302.49	Other	CTH
8302.50	Hat-racks, hat-pegs, brackets and similar fixtures	CTH
8302.60	Automatic door closers	CTH
8303.00	Armoured or reinforced safes, strong-boxes and doors and safe deposit lockers for strong-rooms, cash or deed boxes and the like, of base metal.	CTH
8304.00	Filing cabinets, card-index cabinets, paper trays, paper rests, pen trays, office-stamp stands and similar office or desk equipment, of base metal, other than office furniture of heading 94.03.	CTH
8305	Fittings for loose-leaf binders or files, letter clips, letter corners, paper clips, indexing tags and similar office articles, of base metal; staples in strips (for example, for offices, upholstery, packaging), of base metal.	
8305.10	Fittings for loose-leaf binders or files	CTH or RVC(40)
8305.20	Staples in strips	CTH or RVC(40)
8305.90	Other, including parts	CTH or RVC(40)
8306	Bells, gongs and the like, non-electric, of base metal; statuettes and other ornaments, of base metal; photograph, picture or similar frames, of base metal; mirrors of base metal.	
8306.10	Bells, gongs and the like	CTH
8306.2	Statuettes and other ornaments:	
8306.21	Plated with precious metal	CTH
8306.29	Other	CTH
8306.30	Photograph, picture or similar frames; mirrors	CTH
8307	Flexible tubing of base metal, with or without fittings.	
8307.10	Of iron or steel	CTH
8307.90	Of other base metal	CTH
8308	Clasps, frames with clasps, buckles, buckle-clasps, hooks, eyes, eyelets and the like, of base metal, of a kind used for clothing, footwear, awnings, handbags, travel goods or other made up articles; tubular or bifurcated rivets, of base metal; beads and spangles, of base metal.	
8308.10	Hooks, eyes and eyelets	CTSH
8308.20	Tubular or bifurcated rivets	CTSH
8308.90	Other, including parts	CTSH
8309	Stoppers, caps and lids (including crown corks, screw caps and pouring stoppers), capsules for bottles, threaded bungs, bung covers, seals and other packing accessories, of base metal.	
8309.10	Crown corks	CTH
8309.90	Other	CTH
8310.00	Sign-plates, name-plates, address-plates and similar plates, numbers, letters and other symbols, of base metal, excluding those of heading 94.05.	CTH
8311	Wire, rods, tubes, plates, electrodes and similar products, of base metal or of metal carbides, coated or cored with flux material, of a kind used for soldering, brazing, welding or deposition of metal or of metal carbides; wire and rods, of agglomerated base metal powder, used for metal spraying.	
8311.10	Coated electrodes of base metal, for electric arc-welding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311.20	Cored wire of base metal, for electric arc-welding	CTH
8311.30	Coated rods and cored wire, of base metal, for soldering, brazing or welding by flame	CTH
8311.90	Other	CTH
	SECTION XVI MACHINERY AND MECHANICAL APPLIANCES; ELECTRICAL EQUIPMENT; PARTS THEREOF;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TELEVISION IMAGE AND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AND PARTS AND ACCESSORIES OF SUCH ARTICLES (Chapters 84 and 85)	
84	CHAPTER 84 NUCLEAR REACTORS, BOILERS, MACHINERY AND MECHANICAL APPLIANCES; PARTS THEREOF	
8401	Nuclear reactors; fuel elements (cartridges), non-irradiated, for nuclear reactors; machinery and apparatus for isotopic separation.	
8401.10	Nuclear reactors	CTSH
8401.20	Machinery and apparatus for isotopic separation, and parts thereof	CTSH
8401.30	Fuel elements (cartridges), non-irradiated	CTSH
8401.40	Parts of nuclear reactors	CTH
8402	Steam or other vapour generating boilers (other than central heating hot water boilers capable also of producing low pressure steam); super-heated water boilers.	
8402.1	Steam or other vapour generating boilers:	
8402.11	Watertube boilers with a steam production exceeding 45t per hour	CTSH except from subheading 8402.12
8402.12	Watertube boilers with a steam production not exceeding 45t per hour	CTSH except from subheading 8402.11
8402.19	Other vapour generating boilers, including hybrid boilers	CTSH
8402.20	Super-heated water boilers	CTSH
8402.90	Parts	CTH or RVC(40)
8403	Central heating boiler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84.02.	
8403.10	Boilers	CTSH
8403.90	Parts	CTH or RVC(40)
8404	Auxiliary plant for use with boilers of heading 84.02 or 84.03 (for example, economisers, super-heaters, soot removers, gas recoverers); condensers for steam or other vapour power units.	
8404.10	Auxiliary plant for use with boilers of heading 84.02 or 84.03	CTSH
8404.20	Condensers for steam of other vapour power units	CTSH
8404.90	Parts	CTH or RVC(40)
8405	Producer gas or water gas generators, with or without their purifiers; acetylene gas generators and similar water process gas generators, with or without their purifiers.	
8405.10	Producer gas or water gas generators, with or without their purifiers; acetylene gas generators and similar water process gas generators, with or without their purifiers	CTSH
8405.90	Parts	CTH or RVC(40)
8406	Steam turbines and other vapour turbines.	
8406.10	Turbines for marine propulsion	CTSH
8406.8	Other turbines:	
8406.81	Of an output exceeding 40 MW	CTSH except from subheading 8406.82
8406.82	Of an output not exceeding 40 MW	CTSH except from subheading 8406.81
8406.90	Parts	CTH or RVC(40)
8407	Spark-ignition reciprocating or rotary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	
8407.10	Aircraft engines	CTH or RVC(40)
8407.2	Marine propulsion engines:	
8407.21	Outboard motors	CTH or RVC(40)
8407.29	Other	CTH or RVC(40)
8407.3	Reciprocating piston engines of a kind used for the propulsion of vehicles of Chapter 87:	
8407.31	Of a cylinder capacity not exceeding 50 cc	CTH or RVC(40)
8407.32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50 cc but not exceeding 250 cc	CTH or RVC(40)
8407.33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250 cc but not exceeding 1,000 cc	CTH or RVC(40)
8407.34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1,000 cc	CTH or RVC(40)
8407.90	Other engines	CTH or RVC(40)
8408	Compression-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 (diesel or semi-diesel engin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408.10	Marine propulsion engines	**CTH or RVC(40)**
8408.20	Engines of a kind used for the propulsion of vehicles of Chapter 87	**CTH or RVC(40)**
8408.90	Other engines	**CTH or RVC(40)**
8409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engines of heading 84.07 or 84.08.	
8409.10	For aircraft engines	**CTH or RVC(40)**
8409.9	Other:	
8409.91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	**CTH or RVC(40)**
8409.99	Other	**CTH or RVC(40)**
8410	Hydraulic turbines, water wheels, and regulators therefor.	
8410.1	Hydraulic turbines and water wheels:	
8410.11	Of a power not exceeding 1,000 kW	**CTSH except from subheadings 8410.12 or 8410.13, or RVC(40)**
8410.12	Of a power exceeding 1,000 kW but not exceeding 10,000 kW	**CTSH except from subheadings 8410.11 or 8410.13, or RVC(40)**
8410.13	Of a power exceeding 10,000 kW	**CTSH except from subheadings 8410.11 or 8410.12, or RVC(40)**
8410.90	Parts, including regulators	**CTH or RVC(40)**
8411	Turbo-jets, turbo-propellers and other gas turbines.	
8411.1	Turbo-jets:	
8411.11	Of a thrust not exceeding 25kN	**CTSH except from subheading 8411.12, or RVC(40).**
8411.12	Of a thrust exceeding 25kN	**CTSH except from subheading 8411.11, or RVC(40)**
8411.2	Turbo-propellers:	
8411.21	Of a power not exceeding 1,100 kW	**CTSH except from subheading 8411.22, or RVC(40)**
8411.22	Of a power exceeding 1,100 kW	**CTSH except from subheading 8411.21, or RVC(40)**
8411.8	Other gas turbines:	
8411.81	Of a power not exceeding 5,000 kW	**CTSH except from subheading 8411.82, or RVC (40)**
8411.82	Of a power exceeding 5,000 kW	**CTSH except from subheading 8411.81, or RVC (40)**
8411.9	Parts:	
8411.91	Of turbo-jets or turbo-propellers	**CTH or RVC(40)**
8411.99	Other	**CTH or RVC(40)**
8412	Other engines and motors.	
8412.10	Reaction engines other than turbo-jets	**CTSH or RVC(40)**
8412.2	Hydraulic power engines and motors:	
8412.21	Linear acting (cylinders)	**CTSH or RVC(40)**
8412.29	Other	**CTSH or RVC(40)**
8412.3	Pneumatic power engines and motors:	
8412.31	Linear acting (cylinders)	**CTSH or RVC(40)**
8412.39	Other	**CTSH or RVC(40)**
8412.80	Other	**CTSH or RVC(40)**
8412.90	Parts	**CTH or RVC(40)**
8413	Pumps for liquids, whether or not fitted with a measuring device; liquid elevators.	
8413.1	Pumps fitted or designed to be fitted with a measuring device:	
8413.11	Pumps for dispensing fuel or lubricants, of the type used in filling-stations or in garages	**CTSH or RVC(40)**
8413.19	Other	**CTSH or RVC(40)**
8413.20	Hand pumps, other than those of subheading 8413.11 or 8413. 19	**CTS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413.30	Fuel, lubricating or cooling medium pumps for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	CTSH or RVC(40)
8413.40	Concrete pumps	CTSH or RVC(40)
8413.50	Other reciprocating positive displacement pumps	CTSH or RVC(40)
8413.60	Other rotary positive displacement pumps	CTSH or RVC(40)
8413.70	Other centrifugal pumps	CTSH or RVC(40)
8413.8	Other pumps; liquid elevators:	
8413.81	Pumps	CTSH or RVC(40)
8413.82	Liquid elevators	CTSH or RVC(40)
8413.9	Parts:	
8413.91	Of pumps	CTH or RVC(40)
8413.92	Of liquid elevators	CTH or RVC(40)
8414	Air or vacuum pumps, air or other gas compressors and fans; ventilating or recycling hoods incorporating a fan, whether or not fitted with filters.	
8414.10	Vacuum pumps	CTSH or RVC(40)
8414.20	Hand- or foot-operated air pumps	CTSH or RVC(40)
8414.30	Compressors of a kind used in refrigerating equipment	CTSH or RVC(40)
8414.40	Air compressors mounted on a wheeled chassis for towing	CTSH or RVC(40)
8414.5	Fans:	
8414.51	Table, floor, wall, window, ceiling or roof fans, with a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of an output not exceeding 125 W	CTSH or RVC(40)
8414.59	Other	CTSH or RVC(40)
8414.60	Hoods having a maximum horizontal side not exceeding 120 cm	CTSH or RVC(40)
8414.80	Other	CTSH or RVC(40)
8414.90	Parts	CTH or RVC(40)
8415	Air conditioning machines, comprising a motor-driven fan and elements for changing the temperature and humidity, including those machines in which the humidity cannot be separately regulated.	
8415.10	Window or wall types, self-contained or "split-system"	CTSH or RVC(40)
8415.20	Of a kind used for persons, in motor vehicles	CTSH or RVC(40)
8415.8	Other:	
8415.81	Incorporating a refrigerating unit and a valve for reversal of the cooling/heat cycle (reversible heat pumps)	CTSH or RVC(40)
8415.82	Other, incorporating a refrigerating unit	CTSH or RVC(40)
8415.83	Not incorporating a refrigerating unit	CTSH or RVC(40)
8415.90	Parts	CTH or RVC(40)
8416	Furnace burners for liquid fuel, for pulverised solid fuel or for gas; mechanical stokers, including their mechanical grates, mechanical ash dischargers and similar appliances.	
8416.10	Furnace burners for liquid fuel	CTSH or RVC(40)
8416.20	Other furnace burners, including combination burners	CTSH or RVC(40)
8416.30	Mechanical stokers, including their mechanical grates, mechanical ash dischargers and similar appliances	CTSH or RVC(40)
8416.90	Parts	CTH or RVC(40)
8417	Industrial or laboratory furnaces and ovens, including incinerators, non-electric.	
8417.10	Furnaces and ovens for the roasting, melting or other heat treatment of ores, pyrites or of metals	CTSH or RVC(40)
8417.20	Bakery ovens, including biscuit ovens	CTSH or RVC(40)
8417.80	Other	CTSH or RVC(40)
8417.90	Parts	CTH or RVC(40)
8418	Refrigerators, freezers and other refrigerating or freezing equipment, electric or other; heat pumps other than air conditioning machines of heading 84.15.	
8418.10	Combined refrigerator-freezers, fitted with separate external doors	CTSH or RVC(40)
8418.2	Refrigerators, household type:	
8418.21	Compression-type	CTSH or RVC(40)
8418.29	Other	CTSH or RVC(40)
8418.30	Freezers of the chest type, not exceeding 800 ℓ capacity	CTSH or RVC(40)
8418.40	Freezers of the upright type, not exceeding 900 ℓ capacity	CTS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418.50	Other furniture (chests, cabinets, display counters, showcases and the like) for storage and display, incorporating refrigerating or freezing equipment	**CTSH or RVC(40)**
8418.6	Other refrigerating or freezing equipment; heat pumps:	
8418.61	Heat pumps other than air conditioning machines of heading 84.15	**CTSH or RVC(40)**
8418.69	Other	**CTSH or RVC(40)**
8418.9	Parts:	
8418.91	Furniture designed to receive refrigerating or freezing equipment	**CTH or RVC(40)**
8418.99	Other	**CTH or RVC(40)**
8419	Machinery, plant or laboratory equipment, whether or not electrically heated (excluding furnaces, ovens and other equipment of heading 85.14), for the treatment of materials by a process involving a change of temperature such as heating, cooking, roasting, distilling, rectifying, sterilising, pasteurising, steaming, drying, evaporating, vaporising, condensing or cooling, other than machinery or plant of a kind used for domestic purposes; instantaneous or storage water heaters, non-electric.	
8419.1	Instantaneous or storage water heaters, non-electric:	
8419.11	Instantaneous gas water heaters	**CTSH or RVC(40)**
8419.19	Other	**CTSH or RVC(40)**
8419.20	Medical, surgical or laboratory sterilisers	**CTSH or RVC(40)**
8419.3	Dryers:	
8419.31	For agricultural products	**CTSH or RVC(40)**
8419.32	For wood, paper pulp, paper or paperboard	**CTSH or RVC(40)**
8419.39	Other	**CTSH or RVC(40)**
8419.40	Distilling or rectifying plant	**CTSH or RVC(40)**
8419.50	Heat exchange units	**CTSH or RVC(40)**
8419.60	Machinery for liquefying air or other gases	**CTSH or RVC(40)**
8419.8	Other machinery, plant and equipment:	
8419.81	For making hot drinks or for cooking or heating food	**CTSH or RVC(40)**
8419.89	Other	**CTSH or RVC(40)**
8419.90	Parts	**CT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420	Calendering or other rolling machines, other than for metals or glass, and cylinders therefor.	
8420.10	Calendering or other rolling machines	**CTSH or RVC(40)**
8420.9	Parts:	
8420.91	Cylinders	**CTH or RVC(40)**
8420.99	Other	**CTH or RVC(40)**
8421	Centrifuges, including centrifugal dryers;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or gases.	
8421.1	Centrifuges, including centrifugal dryers:	
8421.11	Cream separators	**CTSH or RVC(40)**
8421.12	Clothes-dryers	**CTSH or RVC(40)**
8421.19	Other	**CTSH or RVC(40)**
8421.2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8421.21	For filtering or purifying water	**CTSH or RVC(40)**
8421.22	For filtering or purifying beverages other than water	**CTSH or RVC(40)**
8421.23	Oil or petrol-filters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CTSH or RVC(40)**
8421.29	Other	**CTSH or RVC(40)**
8421.3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gases:	
8421.31	Intake air filters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CTSH or RVC(40)**
8421.39	Other	**CTSH or RVC(40)**
8421.9	Parts:	
8421.91	Of centrifuges, including centrifugal dryers	**CTH or RVC(40)**
8421.99	Other	**CTH or RVC(40)**
8422	Dish washing machines; machinery for cleaning or drying bottles or other containers; machinery for filling, closing, sealing or labelling bottles, cans, boxes, bags or other containers; machinery for capsuling bottles, jars, tubes and similar containers; other packing or wrapping machinery (including heat-shrink wrapping machinery); machinery for aerating beverages.	
8422.1	Dish washing machines:	
8422.11	Of the household type	**CTS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422.19	Other	**CTSH or RVC(40)**
8422.20	Machinery for cleaning or drying bottles or other containers	**CTSH or RVC(40)**
8422.30	Machinery for filling, closing, sealing or labelling bottles, cans, boxes, bags or other containers; machinery for capsuling bottles, jars, tubes and similar containers; machinery for aerating beverages	**CTSH or RVC(40)**
8422.40	Other packing or wrapping machinery (including heat-shrink wrapping machinery)	**CTSH or RVC(40)**
8422.90	Parts	**CTH or RVC(40)**
8423	Weighing machinery (excluding balances of a sensitivity of 5cg or better), including weight operated counting or checking machines; weighing machine weights of all kinds.	
8423.10	Personal weighing machines, including baby scales; household scales	**CTSH or RVC(40)**
8423.20	Scales for continuous weighing of goods on conveyors	**CTSH or RVC(40)**
8423.30	Constant weight scales and scales for discharging a predetermined weight of material into a bag or container, including hopper scales	**CTSH or RVC(40)**
8423.8	Other weighing machinery:	
8423.81	Having a maximum weighing capacity not exceeding 30 kg	**CTSH or RVC(40)**
8423.82	Having a maximum weighing capacity exceeding 30 kg but not exceeding 5,000 kg	**CTSH or RVC(40)**
8423.89	Other	**CTSH or RVC(40)**
8423.90	Weighing machine weights of all kinds; parts of weighing machinery	**CTH or RVC(40)**
8424	Mechanical appliances (whether or not hand-operated) for projecting, dispersing or spraying liquids or powders; fire extinguishers, whether or not charged; spray guns and similar appliances; steam or sand blasting machines and similar jet projecting machines.	
8424.10	Fire extinguishers, whether or not charged	**CTSH or RVC(40)**
8424.20	Spray guns and similar appliances	**CTSH or RVC(40)**
8424.30	Steam or sand blasting machines and similar jet projecting machines	**CTSH or RVC(40)**
8424.8	Other appliances:	
8424.81	Agricultural or horticultural	**CTSH or RVC(40)**
8424.89	Other	**CTSH or RVC(40)**
8424.90	Parts	**CTH or RVC(40)**
8425	Pulley tackle and hoists other than skip hoists; winches and capstans; jacks.	
8425.1	Pulley tackle and hoists other than skip hoists or hoists of a kind used for raising vehicles:	
8425.11	Powered by electric motor	**CTH or RVC(40)**
8425.19	Other	**CTH or RVC(40)**
8425.3	Winches, capstans	
8425.31	Powered by electric motor	**CTH or RVC(40)**
8425.39	Other	**CTH or RVC(40)**
8425.4	Jacks; hoists of a kind used for raising vehicles:	
8425.41	Built-in jacking systems of a type used in garages	**CTH or RVC(40)**
8425.42	Other jacks and hoists, hydraulic	**CTH or RVC(40)**
8425.49	Other	**CTH or RVC(40)**
8426	Ships' derricks; cranes, including cable cranes; mobile lifting frames, straddle carriers and works trucks fitted with a crane.	
8426.1	Overhead travelling cranes, transporter cranes, gantry cranes, bridge cranes, mobile lifting frames and straddle carriers:	
8426.11	Overhead travelling cranes on fixed support	**CTH or RVC(40)**
8426.12	Mobile lifting frames on tyres and straddle carriers	**CTH or RVC(40)**
8426.19	Other	**CTH or RVC(40)**
8426.20	Tower cranes	**CTH or RVC(40)**
8426.30	Portal or pedestal jib cranes	**CTH or RVC(40)**
8426.4	Other machinery, self-propelled:	
8426.41	On tyres	**CTH or RVC(40)**
8426.49	Other	**CTH or RVC(40)**
8426.9	Other machinery:	
8426.91	Designed for mounting on road vehicles	**CTH or RVC(40)**
8426.99	Other	**CTH or RVC(40)**
8427	Fork-lift trucks; other works trucks fitted with lifting or handling equipment.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427.10	Self-propelled trucks powered by an electric motor	CTH or RVC(40)
8427.20	Other self-propelled trucks	CTH or RVC(40)
8427.90	Other trucks	CTH or RVC(40)
8428	Other lifting, handling, loading or unloading machinery (for example, lifts, escalators, conveyors, teleferics).	
8428.10	Lifts and skip hoists	CTH or RVC(40)
8428.20	Pneumatic elevators and conveyors	CTH or RVC(40)
8428.3	Other continuous-action elevators and conveyors, for goods or materials:	
8428.31	Specially designed for underground use	CTH or RVC(40)
8428.32	Other, bucket type	CTH or RVC(40)
8428.33	Other, belt type	CTH or RVC(40)
8428.39	Other	CTH or RVC(40)
8428.40	Escalators and moving walkways	CTH or RVC(40)
8428.60	Teleferics, chair-lifts, ski-draglines; traction mechanisms for funiculars	CTH or RVC(40)
8428.90	Other machinery	CTH or RVC(40)
8429	Self-propelled bulldozers, angledozers, graders, levellers, scrapers, mechanical shovels, excavators, shovel loaders, tamping machines and road rollers.	
8429.1	Bulldozers and angledozers:	
8429.11	Track laying	CTH or RVC(40)
8429.19	Other	CTH or RVC(40)
8429.20	Graders and levellers	CTH or RVC(40)
8429.30	Scrapers	CTH or RVC(40)
8429.40	Tamping machines and road rollers	CTH or RVC(40)
8429.5	Mechanical shovels, excavators and shovel loaders:	
8429.51	Front-end shovel loaders	CTH or RVC(40)
8429.52	Machinery with a 360° revolving superstructure	CTH or RVC(40)
8429.59	Other	CT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430	Other moving, grading, levelling, scraping, excavating, tamping, compacting, extracting or boring machinery, for earth, minerals or ores; pile-drivers and pile-extractors; snow-ploughs and snow-blowers.	
8430.10	Pile-drivers and pile-extractors	CTH or RVC(40)
8430.20	Snow-ploughs and snow-blowers	CTH or RVC(40)
8430.3	Coal or rock cutters and tunnelling machinery:	
8430.31	Self-propelled	CTH or RVC(40)
8430.39	Other	CTH or RVC(40)
8430.4	Other boring or sinking machinery:	
8430.41	Self-propelled	CTH or RVC(40)
8430.49	Other	CTH or RVC(40)
8430.50	Other machinery, self-propelled	CTH or RVC(40)
8430.6	Other machinery, not self-propelled:	
8430.61	Tamping or compacting machinery	CTH or RVC(40)
8430.69	Other	CTH or RVC(40)
8431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machinery of headings 84.25 to 84.30.	
8431.10	Of machinery of heading 84.25	CTH or RVC(40)
8431.20	Of machinery of heading 84.27	CTH or RVC(40)
8431.3	Of machinery of heading 84.28:	
8431.31	Of lifts, skip hoists or escalators	CTH or RVC(40)
8431.39	Other	CTH or RVC(40)
8431.4	Of machinery of heading 84.26, 84.29 or 84.30:	
8431.41	Buckets, shovels, grabs and grips	CTH or RVC(40)
8431.42	Bulldozer or angledozer blades	CTH or RVC(40)
8431.43	Parts for boring or sinking machinery of subheading 8430.41 or 8430.49	CTH or RVC(40)
8431.49	Other	CTH or RVC(40)
8432	Agricultural, horticultural or forestry machinery for soil preparation or cultivation; lawn or sports-ground rollers.	
8432.10	Ploughs	CTS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432.2	Harrows, scarifiers, cultivators, weeders and hoes:	
8432.21	Disc harrows	**CTSH or RVC(40)**
8432.29	Other	**CTSH or RVC(40)**
8432.30	Seeders, planters and transplanters	**CTSH or RVC(40)**
8432.40	Manure spreaders and fertiliser distributors	**CTSH or RVC(40)**
8432.80	Other machinery	**CTSH or RVC(40)**
8432.90	Parts	**CTH or RVC(40)**
8433	Harvesting or threshing machinery, including straw or fodder balers; grass or hay mowers; machines for cleaning, sorting or grading eggs, fruit or other agricultural produce, other than machinery of heading 84.37.	
8433.1	Mowers for lawns, parks or sports-grounds:	
8433.11	Powered, with the cutting device rotating in a horizontal plane	**CTSH or RVC(40)**
8433.19	Other	**CTSH or RVC(40)**
8433.20	Other mowers, including cutter bars for tractor mounting	**CTSH or RVC(40)**
8433.30	Other haymaking machinery	**CTSH or RVC(40)**
8433.40	Straw or fodder balers, including pick-up balers	**CTSH or RVC(40)**
8433.5	Other harvesting machinery; threshing machinery:	
8433.51	Combine harvester-threshers	**CTSH or RVC(40)**
8433.52	Other threshing machinery	**CTSH or RVC(40)**
8433.53	Root or tuber harvesting machines	**CTSH or RVC(40)**
8433.59	Other	**CTSH or RVC(40)**
8433.60	Machines for cleaning, sorting or grading eggs, fruit or other agricultural produce	**CTSH or RVC(40)**
8433.90	Parts	**CTH or RVC(40)**
8434	Milking machines and dairy machinery.	
8434.10	Milking machines	**CTSH or RVC(40)**
8434.20	Dairy machinery	**CTSH or RVC(40)**
8434.90	Parts	**CT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435	Presses, crushers and similar machinery used in the manufacture of wine, cider, fruit juices or similar beverages.	
8435.10	Machinery	**CTSH or RVC(40)**
8435.90	Parts	**CTH or RVC(40)**
8436	Other agricultural, horticultural, forestry, poultry-keeping or bee-keeping machinery, including germination plant fitted with mechanical or thermal equipment; poultry incubators and brooders.	
8436.10	Machinery for preparing animal feeding stuffs	**CTSH or RVC(40)**
8436.2	Poultry-keeping machinery; poultry incubators and brooders:	
8436.21	Poultry incubators and brooders	**CTSH or RVC(40)**
8436.29	Other	**CTSH or RVC(40)**
8436.80	Other machinery	**CTSH or RVC(40)**
8436.9	Parts:	
8436.91	Of poultry-keeping machinery or poultry incubators and brooders	**CTH or RVC(40)**
8436.99	Other	**CTH or RVC(40)**
8437	Machines for cleaning, sorting or grading seed, grain or dried leguminous vegetables; machinery used in the milling industry or for the working of cereals or dried leguminous vegetables, other than farm-type machinery.	
8437.10	Machines for cleaning, sorting or grading seed, grain or dried leguminous vegetables	**CTSH or RVC(40)**
8437.80	Other machinery	**CTSH or RVC(40)**
8437.90	Parts	**CTH or RVC(40)**
8438	Machinery,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for the industrial preparation or manufacture of food or drink, other than machinery for the extraction or preparation of animal or fixed vegetable fats or oils.	
8438.10	Bakery machinery and machinery for the manufacture of macaroni, spaghetti or similar products	**CTSH or RVC(40)**
8438.20	Machinery for the manufacture of confectionery, cocoa or chocolate	**CTSH or RVC(40)**
8438.30	Machinery for sugar manufacture	**CTSH or RVC(40)**
8438.40	Brewery machinery	**CTS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438.50	Machinery for the preparation of meat or poultry	**CTSH or RVC(40)**
8438.60	Machinery for the preparation of fruits, nuts or vegetables	**CTSH or RVC(40)**
8438.80	Other machinery	**CTSH or RVC(40)**
8438.90	Parts	**CTH or RVC(40)**
8439	Machinery for making pulp of fibrous cellulosic material or for making or finishing paper or paperboard.	
8439.10	Machinery for making pulp of fibrous cellulosic material	**CTSH or RVC(40)**
8439.20	Machinery for making paper or paperboard	**CTSH or RVC(40)**
8439.30	Machinery for finishing paper or paperboard	**CTSH or RVC(40)**
8439.9	Parts:	
8439.91	Of machinery for making pulp of fibrous cellulosic material	**CTH or RVC(40)**
8439.99	Other	**CTH or RVC(40)**
8440	Book-binding machinery, including book-sewing machines.	
8440.10	Machinery	**CTSH or RVC(40)**
8440.90	Parts	**CTH or RVC(40)**
8441	Other machinery for making up paper pulp, paper or paperboard, including cutting machines of all kinds.	
8441.10	Cutting machines	**CTSH or RVC(40)**
8441.20	Machines for making bags, sacks or envelopes	**CTSH or RVC(40)**
8441.30	Machines for making cartons, boxes, cases, tubes, drums or similar containers, other than by moulding	**CTSH or RVC(40)**
8441.40	Machines for moulding articles in paper pulp, paper or paperboard	**CTSH or RVC(40)**
8441.80	Other machinery	**CTSH or RVC(40)**
8441.90	Parts	**CTH or RVC(40)**
8442	Machinery, apparatus and equipment (other than the machine-tools of headings 84.56 to 84.65) for preparing or making plates, cylinders or other printing components; plates, cylinders and other printing components; plates, cylinders and lithographic stones, prepared for printing purposes (for example, planed, grained or polished).	
8442.30	Machinery, apparatus and equipment	**CTSH or RVC(40)**
8442.40	Parts of the foregoing machinery, apparatus or equipment	**CTH or RVC(40)**
8442.50	Plates, cylinders and other printing components; plates, cylinders and lithographic stones, prepared for printing purposes (for example, planed, grained or polished)	**CTH or RVC(40)**
8443	Printing machinery used for printing by means of plates, cylinders and other printing components of heading 84.42; other printers, copying machines and facsimile machines, whether or not combine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8443.1	Printing machinery used for printing by means of plates, cylinders and other printing components of heading 84.42:	
8443.11	Offset printing machinery, reel fed	**CTSH or RVC(40)**
8443.12	Offset printing machinery, sheet-fed, office type (using sheets with one side not exceeding 22 cm and the other side not exceeding 36 cm in the unfolded state)	**CTSH or RVC(40)**
8443.13	Other offset printing machinery	**CTSH or RVC(40)**
8443.14	Letterpress printing machinery, reel fed, excluding flexographic printing	**CTSH or RVC(40)**
8443.15	Letterpress printing machinery, other than reel fed, excluding flexographic printing	**CTSH or RVC(40)**
8443.16	Flexographic printing machinery	**CTSH or RVC(40)**
8443.17	Gravure printing machinery	**CTSH or RVC(40)**
8443.19	Other	**CTSH or RVC(40)**
8443.3	Other printers, copying machines and facsimile machines, whether or not combined:	
8443.31	Machines which perform two or more of the functions of printing, copying or facsimile transmission, capable of connecting to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or to a network	**CTSH or RVC(40)**
8443.32	Other, capable of connecting to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or to a network	**CTSH or RVC(40)**
8443.39	Other	**CTSH or RVC(40)**
8443.9	Parts and accessories:	
8443.91	Parts and accessories of printing machinery used for printing by means of plates, cylinders and other printing components of heading 84.42	**CTH or RVC(40)**
8443.99	Other	**CTH or RVC(40)**
8444.00	Machines for extruding, drawing, texturing or cutting man-made textile materials.	**CT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445	Machines for preparing textile fibres; spinning, doubling or twisting machines and other machinery for producing textile yarns; textile reeling or winding (including weft-winding) machines and machines for preparing textile yarns for use on the machines of heading 84.46 or 84.47.	
8445.1	Machines for preparing textile fibres:	
8445.11	Carding machines	**CTH or RVC(40)**
8445.12	Combing machines	**CTH or RVC(40)**
8445.13	Drawing or roving machines	**CTH or RVC(40)**
8445.19	Other	**CTH or RVC(40)**
8445.20	Textile spinning machines	**CTH or RVC(40)**
8445.30	Textile doubling or twisting machines	**CTH or RVC(40)**
8445.40	Textile winding (including weft-winding) or reeling machines	**CTH or RVC(40)**
8445.90	Other	**CTH or RVC(40)**
8446	Weaving machines (looms)	
8446.10	For weaving fabrics of a width not exceeding 30 cm	**CTH or RVC(40)**
8446.2	For weaving fabrics of a width exceeding 30 cm, shuttle type:	
8446.21	Power looms	**CTH or RVC(40)**
8446.29	Other	**CTH or RVC(40)**
8446.30	For weaving fabrics of a width exceeding 30 cm, Shuttleless type	**CTH or RVC(40)**
8447	Knitting machines, stitch-bonding machines and machines for making gimped yarn, tulle, lace, embroidery, trimmings, braid or net and machines for tufting.	
8447.1	Circular knitting machines:	
8447.11	With cylinder diameter not exceeding 165 ㎜	**CTH or RVC(40)**
8447.12	With cylinder diameter exceeding 165 ㎜	**CTH or RVC(40)**
8447.20	Flat knitting machines; stitch bonding machines	**CTH or RVC(40)**
8447.90	Other	**CT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448	Auxiliary machinery for use with machines of heading 84.44, 84.45, 84.46 or 84.47 (for example, dobbies, Jacquards, automatic stop motions, shuttle changing mechanisms); parts and accessorie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machines of this heading or of heading 84.44, 84.45, 84.46 or 84.47 (for example, spindles and spindle flyers, card clothing, combs, extruding nipples, shuttles, healds and heald-frames, hosiery needles).	
8448.1	Auxiliary machinery for machines of heading 84.44, 84.45, 84.46 or 84.47:	
8448.11	Dobbies and jacquards; card reducing, copying, punching or assembling machines for use therewith	**CTSH or RVC(40)**
8448.19	Other	**CTSH or RVC(40)**
8448.20	Parts and accessories of machines of heading 84.44 or of their auxiliary machinery	**CTH or RVC(40)**
8448.3	Parts and accessories of machines of heading 84.45 or of their auxiliary machinery:	
8448.31	Card clothing	**CTH or RVC(40)**
8448.32	Of machines for preparing textile fibres, other than card clothing	**CTH or RVC(40)**
8448.33	Spindles, spindle flyers, spinning rings and ring travellers	**CTH or RVC(40)**
8448.39	Other	**CTH or RVC(40)**
8448.4	Parts and accessories of weaving machines (looms) or of their auxiliary machinery:	
8448.42	Reeds for looms, healds and heald-frames	**CTH or RVC(40)**
8448.49	Other	**CTH or RVC(40)**
8448.5	Parts and accessories of machines of heading 84.47 or of their auxiliary machinery:	
8448.51	Sinkers, needles and other articles used in forming stitches	**CTH or RVC(40)**
8448.59	Other	**CTH or RVC(40)**
8449.00	Machinery for the manufacture or finishing of felt or nonwovens in the piece or in shapes, including machinery for making felt hats; blocks for making hats.	**CTH or RVC(40)**
8450	Household or laundry-type washing machines, including machines which both wash and dry.	
8450.1	Machines, each of a dry linen capacity not exceeding 10 kg:	
8450.11	Fully-automatic machines	**CTS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450.12	Other machines, with built-in centrifugal drier	**CTSH or RVC(40)**
8450.19	Other	**CTSH or RVC(40)**
8450.20	Machines, each of a dry linen capacity exceeding 10 kg	**CTSH or RVC(40)**
8450.90	Parts	**CTH or RVC(40)**
8451	Machinery (other than machines of heading 84.50) for washing, cleaning, wringing, drying, ironing, pressing (including fusing presses), bleaching, dyeing, dressing, finishing, coating or impregnating textile yarns, fabrics or made up textile articles and machines for applying the paste to the base fabric or other support used in the manufacture of floor coverings such as linoleum; machines for reeling, unreeling, folding, cutting or pinking textile fabrics.	
8451.10	Dry-cleaning machines	**CTSH or RVC(40)**
8451.2	Drying machines:	
8451.21	Each of a dry linen capacity not exceeding 10 kg	**CTSH or RVC(40)**
8451.29	Other	**CTSH or RVC(40)**
8451.30	Ironing machines and presses (including fusing presses)	**CTSH or RVC(40)**
8451.40	Washing, bleaching or dyeing machines	**CTSH or RVC(40)**
8451.50	Machines for reeling, unreeling, folding, cutting or pinking textile fabrics	**CTSH or RVC(40)**
8451.80	Other machinery	**CTSH or RVC(40)**
8451.90	Parts	**CTH or RVC(40)**
8452	Sewing machines, other than book-sewing machines of heading 84.40; furniture, bases and covers specially designed for sewing machines; sewing machine needles.	
8452.10	Sewing machines of the household type	**CTSH except from subheadings 8452.21 or 8452.29, or RVC(40)**
8452.2	Other sewing machines:	
8452.21	Automatic units	**CTSH except from subheadings 8452.10 or 8452.29, or RVC(40)**
8452.29	Other	**CTSH except from subheading 8452.10 or 8452.21, or RVC(40)**
8452.30	Sewing machine needles	**CTSH or RVC(40)**
8452.90	Furniture, bases and covers for sewing machines and parts thereof; other parts of sewing machines	**CTSH or RVC(40)**
8453	Machinery for preparing, tanning or working hides, skins or leather or for making or repairing footwear or other articles of hides, skins or leather, other than sewing machines.	
8453.10	Machinery for preparing, tanning or working hides, skins or leather	**CTSH or RVC(40)**
8453.20	Machinery for making or repairing footwear	**CTSH or RVC(40)**
8453.80	Other machinery	**CTSH or RVC(40)**
8453.90	Parts	**CTH or RVC(40)**
8454	Converters, ladles, ingot moulds and casting machines, of a kind used in metallurgy or in metal foundries.	
8454.10	Converters	**CTSH or RVC(40)**
8454.20	Ingot moulds and ladles	**CTSH or RVC(40)**
8454.30	Casting machines	**CTSH or RVC(40)**
8454.90	Parts	**CTH or RVC(40)**
8455	Metal-rolling mills and rolls therefor.	
8455.10	Tube mills	**CTH or RVC(40)**
8455.2	Other rolling mills:	
8455.21	Hot or combination hot and cold	**CTH or RVC(40)**
8455.22	Cold	**CTH or RVC(40)**
8455.30	Rolls for rolling mills	**CTH or RVC(40)**
8455.90	Other parts	**CTH or RVC(40)**
8456	Machine-tools for working any material by removal of material, by laser or other light or photon beam, ultrasonic, electro-discharge, electro-chemical, electron beam, ionic-beam or plasma arc processes; water-jet cutting machines.	
8456.10	Operated by laser or other light or photon beam processes	**CT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456.20	Operated by ultrasonic processes	CTH or RVC(40)
8456.30	Operated by electro-discharge processes	CTH or RVC(40)
8456.90	Other	CTH or RVC(40)
8457	Machining centres, unit construction machines (single station) and multi-station transfer machines, for working metal.	
8457.10	Machining centres	CTH or RVC(40)
8457.20	Unit construction machines (single station)	CTH or RVC(40)
8457.30	Multi-station transfer machines	CTH or RVC(40)
8458	Lathes(including turning centres) for removing metal.	
8458.1	Horizontal lathes:	
8458.11	Numerically controlled	CTH or RVC(40)
8458.19	Other	CTH or RVC(40)
8458.9	Other lathes:	
8458.91	Numerically controlled	CTH or RVC(40)
8458.99	Other	CTH or RVC(40)
8459	Machine-tools (including way-type unit head machines) for drilling, boring, milling, threading or tapping by removing metal, other than lathes (including turning centres) of heading 84.58.	
8459.10	Way-type unit head machines	CTH or RVC(40)
8459.2	Other drilling machines:	
8459.21	Numerically controlled	CTH or RVC(40)
8459.29	Other	CTH or RVC(40)
8459.3	Other boring-milling machines:	
8459.31	Numerically controlled	CTH or RVC(40)
8459.39	Other	CTH or RVC(40)
8459.40	Other boring machines	CTH or RVC(40)
8459.5	Milling machines, knee-type:	
8459.51	Numerically controlled	CTH or RVC(40)
8459.59	Other	CTH or RVC(40)
8459.6	Other milling machines:	
8459.61	Numerically controlled	CTH or RVC(40)
8459.69	Other	CTH or RVC(40)
8459.70	Other threading or tapping machines	CTH or RVC(40)
8460	Machine-tools for deburring, sharpening, grinding, honing, lapping, polishing or otherwise finishing metal or cermets by means of grinding stones, abrasives or polishing products, other than gear cutting, gear grinding or gear finishing machines of heading 84.61.	
8460.1	Flat-surface grinding machines, in which the positioning in any one axis can be set up to an accuracy of at least 0.01 ㎜:	
8460.11	Numerically controlled	CTH or RVC(40)
8460.19	Other	CTH or RVC(40)
8460.2	Other grinding machines, in which the positioning in any one axis can be set up to an accuracy of at least 0.01 ㎜:	
8460.21	Numerically controlled	CTH or RVC(40)
8460.29	Other	CTH or RVC(40)
8460.3	Sharpening(tool or cutter grinding) Machines:	
8460.31	Numerically controlled	CTH or RVC(40)
8460.39	Other	CTH or RVC(40)
8460.40	Honing or lapping machines	CTH or RVC(40)
8460.90	Other	CTH or RVC(40)
8461	Machine-tools for planing, shaping, slotting, broaching, gear cutting, gear grinding or gear finishing, sawing, cutting-off and other machine-tools working by removing metal or cermet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8461.20	Shaping or slotting machines	CTH or RVC(40)
8461.30	Broaching machines	CTH or RVC(40)
8461.40	Gear cutting, gear grinding or gear finishing machines	CTH or RVC(40)
8461.50	Sawing or cutting-off machines	CTH or RVC(40)
8461.90	Other	CT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462	Machine-tools (including presses) for working metal by forging, hammering or die-stamping; machine-tools (including presses) for working metal by bending, folding, straightening, flattening, shearing, punching or notching; presses for working metal or metal carbides, not specified above.	
8462.10	Forging or die-stamping machines (including presses) and hammers	**CTH or RVC(40)**
8462.2	Bending, folding, straightening or flattening machines (including presses):	
8462.21	Numerically controlled	**CTH or RVC(40)**
8462.29	Other	**CTH or RVC(40)**
8462.3	Shearing machines (including presses), other than combined punching and shearing machines:	
8462.31	Numerically controlled	**CTH or RVC(40)**
8462.39	Other	**CTH or RVC(40)**
8462.4	Punching or notching machines (including presses), including combined punching and shearing machines:	
8462.41	Numerically controlled	**CTH or RVC(40)**
8462.49	Other	**CTH or RVC(40)**
8462.9	Other:	
8462.91	Hydraulic presses	**CTH or RVC(40)**
8462.99	Other	**CTH or RVC(40)**
8463	Other machine-tools for working metal or cermets, without removing material.	
8463.10	Draw-benches for bars, tubes, profiles, wire or the like	**CTH or RVC(40)**
8463.20	Thread rolling machines	**CTH or RVC(40)**
8463.30	Machines for working wire	**CTH or RVC(40)**
8463.90	Other	**CTH or RVC(40)**
8464	Machine-tools for working stone, ceramics, concrete, asbestos-cement or like mineral materials or for cold working glass.	
8464.10	Sawing machines	**CTH or RVC(40)**
8464.20	Grinding or polishing machines	**CTH or RVC(40)**
8464.90	Other	**CT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465	Machine-tools (including machines for nailing, stapling, glueing or otherwise assembling) for working wood, cork, bone, hard rubber, hard plastics or similar hard materials.	
8465.10	Machines which can carry out different types of machining operations without tool change between such operations	**CTH or RVC(40)**
8465.9	Other:	
8465.91	Sawing machines	**CTH or RVC(40)**
8465.92	Planing, milling or moulding (by cutting) machines	**CTH or RVC(40)**
8465.93	Grinding, sanding or polishing machines	**CTH or RVC(40)**
8465.94	Bending or assembling machines	**CTH or RVC(40)**
8465.95	Drilling or morticing machine	**CTH or RVC(40)**
8465.96	Splitting, slicing or paring machines	**CTH or RVC(40)**
8465.99	Other	**CTH or RVC(40)**
8466	Parts and accessorie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machines of headings 84.56 to 84.65, including work or tool holders, self-opening dieheads, dividing heads and other special attachments for machine-tools; tool holders for any type of tool for working in the hand.	
8466.10	Tool holders and self-opening dieheads	**CTH or RVC(40)**
8466.20	Work holders	**CTH or RVC(40)**
8466.30	Dividing heads and other special attachments for machine-tools	**CTH or RVC(40)**
8466.9	Other:	
8466.91	For machines of heading 84.64	**CTH or RVC(40)**
8466.92	For machines of heading 84.65	**CTH or RVC(40)**
8466.93	For machines of headings 84.56 to 84.61	**CTH or RVC(40)**
8466.94	For machines of heading 84.62 or 84.63	**CTH or RVC(40)**
8467	Tools for working in the hand, pneumatic, hydraulic or with self-contained electric or non-electric motor.	
8467.1	Pneumatic:	
8467.11	Rotary type (including combined rotary-percussion)	**CTSH or RVC(40)**
8467.19	Other	**CTS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467.2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8467.21	Drills of all kinds	CTSH or RVC(40)
8467.22	Saws	CTSH or RVC(40)
8467.29	Other	CTSH or RVC(40)
8467.8	Other tools:	
8467.81	Chain saws	CTSH or RVC(40)
8467.89	Other	CTSH or RVC(40)
8467.9	Parts:	
8467.91	Of chain saws	CTH or RVC(40)
8467.92	Of pneumatic tools	CTH or RVC(40)
8467.99	Other	CTH or RVC(40)
8468	Machinery and apparatus for soldering, brazing or welding, whether or not capable of cutting, other than those of heading 85.15; gas-operated surface tempering machines and appliances.	
8468.10	Hand-held blow pipes	CTSH or RVC(40)
8468.20	Other gas-operated machinery and apparatus	CTSH or RVC(40)
8468.80	Other machinery and apparatus	CTSH or RVC(40)
8468.90	Parts	CTH or RVC(40)
8469.00	Typewriters other than printers of heading 84.43; word-processing machines.	CTH or RVC(40)
8470	Calculating machines and pocket-size data recording, reproducing and displaying machines with calculating function; accounting machines, postage-franking machines, ticket-issuing machines and similar machines, incorporating a calculating device; cash registers.	
8470.10	Electronic calculators capable of operation without an external source of electric power and pocket-size data recording, reproducing and displaying machines with calculating functions	CTH or RVC(40)
8470.2	Other electronic calculating machines:	
8470.21	Incorporating a printing device	CTH or RVC(40)
8470.29	Other	CTH or RVC(40)
8470.30	Other calculating machines	CTH or RVC(40)
8470.50	Cash registers	CTH or RVC(40)
8470.90	Other	CTH or RVC(40)
8471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units thereof; magnetic or optical readers, machines for transcribing data onto data media in coded form and machines for processing such data,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8471.30	Portable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weighing not more than 10 kg, consisting of at least a central processing unit, a keyboard and a display	CTH or RVC(40)
8471.4	Othe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8471.41	Comprising in the same housing at least a central processing unit and an input and output unit, whether or not combined	CTH or RVC(40)
8471.49	Other, presented in the form of systems	CTH or RVC(40)
8471.50	Processing units other than those of subheading 8471.41 or 8471.49, whether or not containing in the same housing one or two of the following types of unit: storage units, input units, output units	CTH or RVC(40)
8471.60	Input or output units, whether or not containing storage units in the same housing	CTH or RVC(40)
8471.70	Storage units	CTH or RVC(40)
8471.80	Other units of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CTH or RVC(40)
8471.90	Other	CTH or RVC(40)
8472	Other office machines (for example, hectograph or stencil duplicating machines, addressing machines, automatic banknote dispensers, coin-sorting machines, coin-counting or wrapping machines, pencil-sharpening machines, perforating or stapling machines).	
8472.10	Duplicating machines	CTH or RVC(40)
8472.30	Machines for sorting or folding mail or for inserting mail in envelopes or bands, machines for opening, closing or sealing mail and machines for affixing or cancelling postage stamps	CTH or RVC(40)
8472.90	Other	CTH or RVC(40)
8473	Parts and accessories (other than covers, carrying cases and the like)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machines of headings 84.69 to 84.72.	
8473.10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achines of heading 84.69	CT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473.2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achines of heading 84.70:	
8473.21	Of the electronic calculating machines of subheading 8470.10, 8470.21 or 8470.29	**CTH or RVC(40)**
8473.29	Other	**CTH or RVC(40)**
8473.30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achines of heading 84.71	**CTH or RVC(40)**
8473.40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achines of heading 84.72	**CTH or RVC(40)**
8473.50	Parts and accessories equally suitable for use with machines of two or more of the headings 84.69 to 84.72	**CTH or RVC(40)**
8474	Machinery for sorting, screening, separating, washing, crushing, grinding, mixing or kneading earth, stone, ores or other mineral substances, in solid (including powder or paste) form; machinery for agglomerating, shaping or moulding solid mineral fuels, ceramic paste, unhardened cements, plastering materials or other mineral products in powder or paste form; machines for forming foundry moulds of sand.	
8474.10	Sorting, screening, separating or washing machines	**CTSH or RVC(40)**
8474.20	Crushing or grinding machines	**CTSH or RVC(40)**
8474.3	Mixing or kneading machines:	
8474.31	Concrete or mortar mixers	**CTSH or RVC(40)**
8474.32	Machines for mixing mineral substances with bitumen	**CTSH or RVC(40)**
8474.39	Other	**CTSH or RVC(40)**
8474.80	Other machinery	**CTSH or RVC(40)**
8474.90	Parts	**CTH or RVC(40)**
8475	Machines for assembling electric or electronic lamps, tubes or valves or flashbulbs, in glass envelopes; machines for manufacturing or hot working glass or glassware.	
8475.10	Machines for assembling electric or electronic lamps, tubes or valves or flashbulbs, in glass envelopes	**CTSH or RVC(40)**
8475.2	Machines for manufacturing or hot working glass or glassware:	
8475.21	Machines for making optical fibres and preforms thereof	**CTSH or RVC(40)**
8475.29	Other	**CTSH or RVC(40)**
8475.90	Parts	**CT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476	Automatic goods-vending machines (for example, postage stamp, cigarette, food or beverage machines), including money-changing machines.	
8476.2	Automatic beverage-vending machines:	
8476.21	Incorporating heating or refrigerating devices	**CTSH except from subheadings 8476.29 to 8476.89, or RVC(40)**
8476.29	Other	**CTSH except from subheadings 8476.21, 8476.81 or 8476.89, or RVC(40)**
8476.8	Other machines:	
8476.81	Incorporating heating or refrigerating devices	**CTSH except from subheadings 8476.21, 8476.29 or 8476.89, or RVC(40)**
8476.89	Other	**CTSH except from subheadings 8476.21 to 8476.81, or RVC(40)**
8476.90	Parts	**CTH or RVC(40)**
8477	Machinery for working rubber or plastics or for the manufacture of products from these material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8477.10	Injection-moulding machines	**CTSH or RVC(40)**
8477.20	Extruders	**CTSH or RVC(40)**
8477.30	Blow moulding machines	**CTSH or RVC(40)**
8477.40	Vacuum moulding machines and other thermoforming machines	**CTSH or RVC(40)**
8477.5	Other machinery for moulding or otherwise forming:	
8477.51	For moulding or retreading pneumatic tyres or for moulding or otherwise forming inner tubes	**CTSH or RVC(40)**
8477.59	Other	**CTSH or RVC(40)**
8477.80	Other machinery	**CTS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477.90	Parts	CTH or RVC(40)
8478	Machinery for preparing or making up tobacco,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8478.10	Machinery	CTSH or RVC(40)
8478.90	Parts	CTH or RVC(40)
8479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8479.10	Machinery for public works, building or the like	CTSH or RVC(40)
8479.20	Machinery for the extraction or preparation of animal or fixed vegetable fats or oils	CTSH or RVC(40)
8479.30	Presses for the manufacture of particle board or fibre building 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 and other machinery for treating wood or cork	CTSH or RVC(40)
8479.40	Rope or cable-making machines	CTSH or RVC(40)
8479.50	Industrial robot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CTSH or RVC(40)
8479.60	Evaporative air coolers	CTSH or RVC(40)
8479.7	Passenger boarding bridges:	
8479.71	Of a kind used in airports	CTSH or RVC(40)
8479.79	Other	CTSH or RVC(40)
8479.8	Other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8479.81	For treating metal, including electric wire coil-winders	CTSH or RVC(40)
8479.82	Mixing, kneading, crushing, grinding, screening, sifting, homogenising, emulsifying or stirring machines	CTSH or RVC(40)
8479.89	Other	CTSH or RVC(40)
8479.90	Parts	CTH or RVC(40)
8480	Moulding boxes for metal foundry; mould bases; moulding patterns; moulds for metal (other than ingot moulds), metal carbides, glass, mineral materials, rubber or plastics.	
8480.10	Moulding boxes for metal foundry	CTH or RVC(40)
8480.20	Mould bases	CTH or RVC(40)
8480.30	Moulding patterns	CTH or RVC(40)
8480.4	Moulds for metal or metal carbides:	
8480.41	Injection or compression types	CTH or RVC(40)
8480.49	Other	CTH or RVC(40)
8480.50	Moulds for glass	CTH or RVC(40)
8480.60	Moulds for mineral materials	CTH or RVC(40)
8480.7	Moulds for rubber or plastics:	
8480.71	Injection or compression types	CTH or RVC(40)
8480.79	Other	CTH or RVC(40)
8481	Taps, cocks, valves and similar appliances for pipes, boiler shells, tanks, vats or the like, including pressure-reducing valves and thermostatically controlled valves.	
8481.10	Pressure-reducing valves	CTH or RVC(40)
8481.20	Valves for oleohydraulic or pneumatic transmissions	CTH or RVC(40)
8481.30	Check (nonreturn) valves	CTH or RVC(40)
8481.40	Safety or relief valves	CTH or RVC(40)
8481.80	Other appliances	CTH or RVC(40)
8481.90	Parts	CTH or RVC(40)
8482	Ball or roller bearings.	
8482.10	Ball bearings	CTSH or RVC(40)
8482.20	Tapered roller bearings, including cone and tapered roller assemblies	CTSH or RVC(40)
8482.30	Spherical roller bearings	CTSH or RVC(40)
8482.40	Needle roller bearings	CTSH or RVC(40)
8482.50	Other cylindrical roller bearings	CTSH or RVC(40)
8482.80	Other, including combined ball/roller bearings	CTSH or RVC(40)
8482.9	Parts:	
8482.91	Balls, needles and rollers	CTH or RVC(40)
8482.99	Other	CT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483	Transmission shafts (including cam shafts and crank shafts) and cranks; bearing housings and plain shaft bearings; gears and gearing; ball or roller screws; gear boxes and other speed changers, including torque converters; flywheels and pulleys, including pulley blocks; clutches and shaft couplings (including universal joints).	
8483.10	Transmission shafts (including cam shafts and crank shafts) and cranks	CTH or RVC(40)
8483.20	Bearing housings, incorporating ball or roller bearings	CTH or RVC(40)
8483.30	Bearing housings, not incorporating ball or roller bearings; plain shaft bearings	CTH or RVC(40)
8483.40	Gears and gearing, other than toothed wheels, chain sprockets and other transmission elements presented separately; ball or roller screws; gear boxes and other speed changers, including torque converters	CTH or RVC(40)
8483.50	Flywheels and pulleys, including pulley blocks	CTH or RVC(40)
8483.60	Clutches and shaft couplings (including universal joints)	CTH or RVC(40)
8483.90	Toothed wheels, chain sprockets and other transmission elements presented separately; parts	CTH or RVC(40)
8484	Gaskets and similar joints of metal sheeting combined with other material or of two or more layers of metal; sets or assortments of gaskets and similar joints, dissimilar in composition, put up in pouches, envelopes or similar packings; mechanical seals.	
8484.10	Gaskets and similar joints of metal sheeting combined with other material or of two or more layers metal	CTSH or RVC(40)
8484.20	Mechanical seals	CTSH or RVC(40)
8484.90	Other	CTSH or RVC(40)
8486	Machines and apparatus of a kind used solely or principally for the manufacture of semiconductor boules or wafers, semiconductor devices,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or flat panel displays; machines and apparatus specified in Note 9 (C) to this Chapter; parts and accessories	
8486.10	Machines and apparatus for the manufacture of boules or wafers	CTSH or RVC(40)
8486.20	Machines and apparatus for the manufacture of semiconductor devices or of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CTSH or RVC(40)
8486.30	Machines and apparatus for the manufacture of flat panel displays	CTSH or RVC(40)
8486.40	Machines and apparatus specified in Note 9 (C) to this Chapter	CTSH or RVC(40)
8486.90	Parts and accessories	CTSH or RVC(40)
8487	Machinery parts, not containing electrical connectors, insulators, coils, contacts or other electrical feature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8487.10	Ships' or boats' propellers and blades therefor	CTSH or RVC(40)
8487.90	Other	CTH or RVC(40)
85	CHAPTER 85 ELECTRICAL MACHINERY AND EQUIPMENT AND PARTS THEREOF;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TELEVISION IMAGE AND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AND PARTS AND ACCESSORIES OF SUCH ARTICLES	
8501	Electric motors and generators (excluding generating sets).	
8501.10	Motors of an output not exceeding 37.5 W	CTH or RVC(40)
8501.20	Universal AC/DC motors of an output exceeding 37.5 W	CTH or RVC(40)
8501.3	Other DC motors; DC generators:	
8501.31	Of an output not exceeding 750 W	CTH or RVC(40)
8501.32	Of an output exceeding 750 W but not exceeding 75 kW	CTH or RVC(40)
8501.33	Of an output exceeding 75 kW but not exceeding 375 kW	CTH or RVC(40)
8501.34	Of an output exceeding 375 kW	CTH or RVC(40)
8501.40	Other AC motors, single-phase	CTH or RVC(40)
8501.5	Other AC motors, multi-phase:	
8501.51	Of an output not exceeding 750 W	CTH or RVC(40)
8501.52	Of an output exceeding 750 W but not exceeding 75 kW	CTH or RVC(40)
8501.53	Of an output exceeding 75 kW	CTH or RVC(40)
8501.6	AC generators(alternators):	
8501.61	Of an output not exceeding 75 kVA	CTH or RVC(40)
8501.62	Of an output exceeding 75 kVA but not exceeding 375 kVA	CTH or RVC(40)
8501.63	Of an output exceeding 375 kVA but not exceeding 750 kVA	CTH or RVC(40)
8501.64	Of an output exceeding 750 kVA	CTH or RVC(40)
8502	Electric generating sets and rotary converter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502.1	Generating sets with compression-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diesel or semi-diesel engines):	
8502.11	Of an output not exceeding 75 kVA	CTH or RVC(40)
8502.12	Of an output exceeding 75 kVA but not exceeding 375 kVA	CTH or RVC(40)
8502.13	Of an output exceeding 375 kVA	CTH or RVC(40)
8502.20	Generating sets with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	CTH or RVC(40)
8502.3	Other generating sets:	
8502.31	Wind-powered	CTH or RVC(40)
8502.39	Other	CTH or RVC(40)
8502.40	Electric rotary converters	CTH or RVC(40)
8503.00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machines of heading 85.01 or 85.02.	CTH or RVC(40)
8504	Electrical transformers, static converters(for example, rectifiers) and inductors.	
8504.10	Ballasts for discharge lamps or tubes	CTSH except from subheadings 8504.21 to 8504.50, or RVC(40)
8504.2	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	
8504.21	Having a power handling capacity not exceeding 650 kVA	CTSH except from subheadings 8504.10 or 8504.22 to 8504.50, or RVC(40)
8504.22	Having a power handling capacity exceeding 650 kVA but not exceeding 10,000 kVA	CTSH except from subheadings 8504.10, 8504.21 or 8504.23 to 8504.50, or RVC(40)
8504.23	Having a power handling capacity exceeding 10,000 kVA	CTSH except from subheadings 8504.10 to 8504.22 or 8504.31 to 8504.50, or RVC(40)
8504.3	Other transformers:	
8504.31	Having a power handling capacity not exceeding 1 kVA	CTSH except from subheadings 8504.32 to 8504.34, or RVC(40)
8504.32	Having a power handling capacity exceeding 1 kVA but not exceeding 16 kVA	CTSH except from subheadings 8504.10 to 8504.31 or 8504.33 to 8504.50, or RVC(40)
8504.33	Having a power handling capacity exceeding 16 kVA but not exceeding 500 kVA	CTSH except from subheadings 8504.10 to 8504.32 or 8504.34 to 8504.50, or RVC(40)
8504.34	Having a power handling capacity exceeding 500 kVA	CTSH except from subheadings 8504.10 to 8504.33, 8504.40 or 8504.50, or RVC(40)
8504.40	Static converters	CTSH except from subheadings 8504.10 to 8504.34 or 8504.50, or RVC(40)
8504.50	Other inductors	CTSH except from subheadings 8504.10 to 8504.40, or RVC(40)
8504.90	Parts	CTH or RVC(40)
8505	Electro-magnets; permanent magnets and articles intended to become permanent magnets after magnetisation; electromagnetic or permanent magnet chucks, clamps and similar holding devices; electro-magnetic couplings, clutches and brakes; electro-magnetic lifting head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505.1	Permanent magnets and articles intended to become permanent magnets after magnetisation:	
8505.11	Of metal	CTSH or RVC(40)
8505.19	Other	CTSH or RVC(40)
8505.20	Electro-magnetic couplings, clutches and brakes	CTSH or RVC(40)
8505.90	Other, including parts	CTH or RVC(40)
8506	Primary cells and primary batteries.	
8506.10	Manganese dioxide	CTSH or RVC(40)
8506.30	Mercuric oxide	CTSH or RVC(40)
8506.40	Silver oxide	CTSH or RVC(40)
8506.50	Lithium	CTSH or RVC(40)
8506.60	Air-Zinc	CTSH or RVC(40)
8506.80	Other primary cells and primary batteries	CTSH or RVC(40)
8506.90	Parts	CTH or RVC(40)
8507	Electric accumulators, including separators therefor, whether or not rectangular(including square).	
8507.10	Lead-acid, of a kind used for starting piston engines	CTSH or RVC(40)
8507.20	Other lead-acid accumulators	CTSH or RVC(40)
8507.30	Nickel-cadmium	CTSH or RVC(40)
8507.40	Nickel-iron	CTSH or RVC(40)
8507.50	Nickel-metal hydride	CTSH or RVC(40)
8507.60	Lithium-ion	CTSH or RVC(40)
8507.80	Other accumulators	CTSH or RVC(40)
8507.90	Parts	CTH or RVC(40)
8508	Vacuum cleaners	
8508.1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8508.11	Of a power not exceeding 1,500 W and having a dust bag or other receptacle capacity not exceeding 20 ℓ	CTSH except from subheading 8508.19, or RVC(40)
8508.19	Other	CTSH except from subheading 8508.11, or RVC(40)
8508.60	Other vacuum cleaners	CTSH or RVC(40)
8508.70	Parts	CTH or RVC(40)
8509	Electro-mechanical domestic appliance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other than vacuum cleaners of heading 85.08.	
8509.40	Food grinders and mixers; fruit or vegetable juice extractors	CTSH or RVC(40)
8509.80	Other appliances	CTSH or RVC(40)
8509.90	Parts	CTH or RVC(40)
8510	Shavers, hair clippers and hair-removing appliance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8510.10	Shavers	CTSH or RVC(40)
8510.20	Hair clippers	CTSH or RVC(40)
8510.30	Hair-removing appliances	CTSH or RVC(40)
8510.90	Parts	CTH or RVC(40)
8511	Electrical ignition or starting equipment of a kind used for spark-ignition or compression-ignition internal combustion engines (for example, ignition magnetos, magneto-dynamos, ignition coils, sparking plugs and glow plugs, starter motors); generators (for example, dynamos, alternators) and cut-outs of a kind used in conjunction with such engines.	
8511.10	Sparking plugs	CTSH or RVC(40)
8511.20	Ignition Magnetos; magneto-dynamos; magnetic flywheels	CTSH or RVC(40)
8511.30	Distributors; ignition coils	CTSH or RVC(40)
8511.40	Starter motors and dual purpose starter-generators	CTSH or RVC(40)
8511.50	Other generators	CTSH or RVC(40)
8511.80	Other equipment	CTSH or RVC(40)
8511.90	Parts	CT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512	Electrical lighting or signalling equipment(excluding articles of heading 85.39), windscreen wipers, defrosters and demisters of a kind used for cycles or motor vehicles.	
8512.10	Lighting or visual signalling equipment of a kind used on bicycles	**CTSH except from subheadings 8512.20 or 8512.30, or RVC(40)**
8512.20	Other lighting or visual signalling equipment	**CTSH except from subheadings 8512.10 or 8512.30, or RVC(40)**
8512.30	Sound signalling equipment	**CTSH except from subheadings 8512.10 or 8512.20, or RVC(40)**
8512.40	Windscreen wipers, defrosters and demisters	**CTH or RVC(40)**
8512.90	Parts	**CTH or RVC(40)**
8513	Portable electric lamps designed to function by their own source of energy(for example, dry batteries, accumulators, magnetos), other than lighting equipment of heading 85.12.	
8513.10	Lamps	**CTH or RVC(40)**
8513.90	Parts	**CTH or RVC(40)**
8514	Industrial or laboratory electric furnaces and ovens (including those functioning by induction or dielectric loss); other industrial or laboratory equipment for the heat treatment of materials by induction or dielectric loss.	
8514.10	Resistance heated furnaces and ovens	**CTSH or RVC(40)**
8514.20	Furnaces and ovens functioning by induction or dielectric loss	**CTSH or RVC(40)**
8514.30	Other furnaces and ovens	**CTSH or RVC(40)**
8514.40	Other equipment for the heat treatment of materials by induction or dielectric loss	**CTSH or RVC(40)**
8514.90	Parts	**CTH or RVC(40)**
8515	Electric (including electrically heated gas), laser or other light or photon beam, ultrasonic, electron beam, magnetic pulse or plasma arc soldering, brazing or welding machines and apparatus, whether or not capable of cutting; electric machines and apparatus for hot spraying of metals or cermets.	
8515.1	Brazing or soldering machine and apparatus:	
8515.11	Soldering irons and guns	**CTSH or RVC(40)**
8515.19	Other	**CTSH or RVC(40)**
8515.2	Machines and apparatus for resistance welding of metal:	
8515.21	Fully or partly automatic	**CTSH or RVC(40)**
8515.29	Other	**CTSH or RVC(40)**
8515.3	Machines and apparatus for arc(including plasma arc) welding of metals:	
8515.31	Fully or partly automatic	**CTSH or RVC(40)**
8515.39	Other	**CTSH or RVC(40)**
8515.80	Other machines and apparatus	**CTSH or RVC(40)**
8515.90	Parts	**CTH or RVC(40)**
8516	Electric instantaneous or storage water heaters and immersion heaters; electric space heating apparatus and soil heating apparatus; electro-thermic hair-dressing apparatus (for example, hair dryers, hair curlers, curling tong heaters) and hand dryers; electric smoothing irons; other electro-thermic appliances of a kind used for domestic purposes; electric heating resistor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85.45.	
8516.10	Electric instantaneous or storage water heaters and immersion heaters	**CTSH or RVC(40)**
8516.2	Electric space heating apparatus and electric soil heating apparatus:	
8516.21	Storage heating radiators	**CTSH or RVC(40)**
8516.29	Other	**CTSH or RVC(40)**
8516.3	Electro-thermic hair-dressing of hand-drying apparatus:	
8516.31	Hair dryers	**CTSH or RVC(40)**
8516.32	Other hair-dressing apparatus	**CTS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516.33	Hand-drying apparatus	CTSH or RVC(40)
8516.40	Electric smoothing irons	CTSH or RVC(40)
8516.50	Microwave ovens	CTSH or RVC(40)
8516.60	Other ovens; cookers, cooking plates, boiling rings, grillers and roasters	CTSH or RVC(40)
8516.7	Other electro-thermic appliances:	
8516.71	Coffee or tea makers	CTSH or RVC(40)
8516.72	Toasters	CTSH or RVC(40)
8516.79	Other	CTSH or RVC(40)
8516.80	Electric heating resistors	CTSH or RVC(40)
8516.90	Parts	CTH or RVC(40)
8517	Telephone sets, including telephones for cellular networks or for other wireless networks; other apparatus for the transmission or reception of voice, images or other data, including apparatus for communication in a wired or wireless network (such as a local or wide area network), other than transmission or reception apparatus of heading 84.43, 85.25, 85.27 or 85.28.	
8517.1	Telephone sets, including telephones for cellular networks or for other wireless networks:	
8517.11	Line telephone sets with cordless handsets	CTSH or RVC(40)
8517.12	Telephones for cellular networks or for other wireless networks	CTSH or RVC(40)
8517.18	Other	CTSH or RVC(40)
8517.6	Other apparatus for transmission or reception of voice, images or other data, including apparatus for communication in a wired or wireless network (such as a local or wide area network):	
8517.61	Base stations	CTSH or RVC(40)
8517.62	Machines for the reception, conversion and transmission or regeneration of voice, images or other data, including switching and routing apparatus	CTSH or RVC(40)
8517.69	Other	CTSH or RVC(40)
8517.70	Parts	CT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518	Microphones and stands therefor; loudspeakers, whether or not mounted in their enclosures; headphones and earphones, whether or not combined with a microphone, and sets consisting of a microphone and one or more loudspeakers; audio-frequency electric amplifiers; electric sound amplifier sets.	
8518.10	Microphones and stands therefor	CTH or RVC(40)
8518.2	Loudspeakers, whether or not mounted in their enclosures:	
8518.21	Single loudspeakers, mounted in their enclosures	CTH or RVC(40)
8518.22	Multiple loudspeakers, mounted in the same enclosure	CTH or RVC(40)
8518.29	Other	CTH or RVC(40)
8518.30	Headphones and earphones, whether or not combined with a microphone, and sets consisting of a microphone and one or more loudspeakers	CTH or RVC(40)
8518.40	Audio-frequency electric amplifiers	CTH or RVC(40)
8518.50	Electric sound amplifier sets	CTH or RVC(40)
8518.90	Parts	CTH or RVC(40)
8519	Sound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8519.20	Apparatus operated by coins, banknotes, bank cards, tokens or by other means of payment	CTH or RVC(40)
8519.30	Turntables (record-decks)	CTH or RVC(40)
8519.50	Telephone answering machines	CTH or RVC(40)
8519.8	Other apparatus:	
8519.81	Using magnetic, optical or semiconductor media	CTH or RVC(40)
8519.89	Other	CTH or RVC(40)
8521	Video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a video tuner.	
8521.10	Magnetic tape-type	CTH or RVC(40)
8521.90	Other	CTH or RVC(40)
8522	Parts and accessorie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apparatus of headings 85.19 or 85.21.	
8522.10	Pick-up cartridges	CT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522.90	Other	CTH or RVC(40)
8523	Discs, tapes, solid-state non-volatile storage devices, "smart cards" and other media for the recording of sound or of other phenomena, whether or not recorded, including matrices and masters for the production of discs, but excluding products of Chapter 37.	
8523.2	Magnetic media:	
8523.21	Cards incorporating a magnetic stripe	CTH or RVC(40)
8523.29	Other	CTH or RVC(40)
8523.4	Optical media:	
8523.41	Unrecorded	CTH or RVC(40)
8523.49	Other	CTH or RVC(40)
8523.5	Semiconductor media:	
8523.51	Solid-state non-volatile storage devices	CTH or RVC(40)
8523.52	"Smart cards"	CTH or RVC(40)
8523.59	Other	CTH or RVC(40)
8523.80	Other	CTH or RVC(40)
8525	Transmission apparatus for radio-broadcasting or television,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reception apparatus or sound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television cameras, digital cameras and video camera recorders.	
8525.50	Transmission apparatus	CTH except from heading 8517, or RVC(40)
8525.60	Transmission apparatus incorporating reception apparatus	CTH except from heading 8517, or RVC(40)
8525.80	Television cameras, digital cameras and video camera recorders	CTH or RVC(40)
8526	Radar apparatus, radio navigational aid apparatus and radio remote control apparatus.	
8526.10	Radar apparatus	CTH or RVC(40)
8526.9	Other:	
8526.91	Radio navigational aid apparatus	CTH or RVC(40)
8526.92	Radio remote control apparatus	CT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527	Reception apparatus for radio-broadcasting, whether or not combined, in the same housing, with sound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or a clock.	
8527.1	Radio-broadcast receivers capable of operating without an external source of power:	
8527.12	Pocket-size radio cassette-players	CTH or RVC(40)
8527.13	Other apparatus, combined with sound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CTH or RVC(40)
8527.19	Other	CTH or RVC(40)
8527.2	Radio-broadcast receivers not capable of operating without an external source of power, of a kind used in motor vehicles:	
8527.21	Combined with sound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CTH or RVC(40)
8527.29	Other	CTH or RVC(40)
8527.9	Other:	
8527.91	Combined with sound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CTH or RVC(40)
8527.92	Not combined with sound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but combined with a clock	CTH or RVC(40)
8527.99	Other	CTH or RVC(40)
8528	Monitors and projectors, not incorporating television reception apparatus; reception apparatus for television,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radio-broadcast receivers or sound or video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8528.4	Cathode-ray tube monitors:	
8528.41	Of a kind solely or principally used in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system of heading 84.71	CTH or RVC(40)
8528.49	Other	CTH or RVC(40)
8528.5	Other monitors:	
8528.51	Of a kind solely or principally used in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system of heading 84.71	CTH or RVC(40)
8528.59	Other	CTH or RVC(40)
8528.6	Projectors:	
8528.61	Of a kind solely or principally used in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system of heading 84.71	CTH or RVC(40)
8528.69	Other	CTH or RVC(40)
8528.7	Reception apparatus for television,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radio-broadcast receivers or sound or video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528.71	Not designed to incorporate a video display or screen	CTH or RVC(40)
8528.72	Other, colour	CTH or RVC(40)
8528.73	Other, monochrome	CTH or RVC(40)
8529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apparatus of headings 85.25 to 85.28.	
8529.10	Aerials and aerial reflectors of all kinds; parts suitable for use therewith	CTH or RVC(40)
8529.90	Other	CTH or RVC(40)
8530	Electrical signalling, safety or traffic control equipment for railways, tramways, roads, inland waterways, parking facilities, port installations or airfield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86.08).	
8530.10	Equipment for railways or tramways	CTSH or RVC(40)
8530.80	Other equipment	CTSH or RVC(40)
8530.90	Parts	CTH or RVC(40)
8531	Electric sound or visual signalling apparatus(for example, bells, sirens, indicator panels, burglar or fire alarm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85.12 or 85.30.	
8531.10	Burglar or fire alarms and similar apparatus	CTSH or RVC(40)
8531.20	Indicator panels incorporating liquid crystal devices (LCD) or light emitting diodes(LED)	CTSH or RVC(40)
8531.80	Other apparatus	CTSH or RVC(40)
8531.90	Parts	CTH or RVC(40)
8532	Electrical capacitors, fixed, variable or adjustable(pre-set).	
8532.10	Fixed capacitors designed for use in 50/60 Hz circuits and having a reactive power handling capacity of not less than 0.5 kvar(power capacitors)	CTSH or RVC(40)
8532.2	Other fixed capacitors:	
8532.21	Tantalum	CTSH or RVC(40)
8532.22	Aluminium electrolytic	CTSH or RVC(40)
8532.23	Ceramic dielectric, single layer	CTSH or RVC(40)
8532.24	Ceramic dielectric, multilayer	CTSH or RVC(40)
8532.25	Dielectric of paper or plastics	CTSH or RVC(40)
8532.29	Other	CTSH or RVC(40)
8532.30	Variable or adjustable(pre-set) capacitors	CTSH or RVC(40)
8532.90	Parts	CTH or RVC(40)
8533	Electrical resistors(including rheostats and potentiometers), other than heating resistors.	
8533.10	Fixed carbon resistors, composition or film types	CTSH or RVC(40)
8533.2	Other fixed resistors:	
8533.21	For a power handling capacity not exceeding 20 W	CTSH or RVC(40)
8533.29	Other	CTSH or RVC(40)
8533.3	Wirewound variable resistors, including rheostats and potentiometers:	
8533.31	For a power handling capacity not exceeding 20 W	CTSH or RVC(40)
8533.39	Other	CTSH or RVC(40)
8533.40	Other variable resistors, including rheostats and potentiometers	CTSH or RVC(40)
8533.90	Parts	CTH or RVC(40)
8534.00	Printed circuits.	CTH or RVC(40)
8535	Electrical apparatus for switching or protecting electrical circuits, or for making connections to or in electrical circuits (for example, switches, fuses, lightning arresters, voltage limiters, surge suppressors, plugs and other connectors and junction boxes), for a voltage exceeding 1,000 volts.	
8535.10	Fuses	CTH or RVC(40)
8535.2	Automatic circuit breakers:	
8535.21	For a voltage of less than 72.5 kV	CTH or RVC(40)
8535.29	Other	CTH or RVC(40)
8535.30	Isolating switches and make-and-break switches	CTH or RVC(40)
8535.40	Lightning arresters, voltage limiters and surge suppressors	CTH or RVC(40)
8535.90	Other	CT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536	Electrical apparatus for switching or protecting electrical circuits, or for making connections to or in electrical circuits (for example, switches relays, fuses, surge suppressors, plugs, sockets, lamp-holders and other connectors, junction boxes), for a voltage not exceeding 1,000volts; connectors for optical fibres, optical fibre bundles or cables.	
8536.10	Fuses	CTH or RVC(40)
8536.20	Automatic circuit breakers	CTH or RVC(40)
8536.30	Other apparatus for protecting electrical circuits	CTH or RVC(40)
8536.4	Relays:	
8536.41	For a voltage not exceeding 60 V	CTH or RVC(40)
8536.49	Other	CTH or RVC(40)
8536.50	Other switches	CTH or RVC(40)
8536.6	Lamp-holders, plugs and sockets:	
8536.61	Lamp-holders	CTH or RVC(40)
8536.69	Other	CTH or RVC(40)
8536.70	Connectors for optical fibres, optical fibre bundles or cables	CTH or RVC(40)
8536.90	Other apparatus	CTH or RVC(40)
8537	Boards, panels, consoles, desks, cabinets and other bases, equipped with two or more apparatus of heading 85.35 or 85.36, for electric control or the distribution of electricity, including those incorporating instruments or apparatus of Chapter 90, and numerical control apparatus, other than switching apparatus of heading 85.17.	
8537.10	For a voltage not exceeding 1,000 V	CTH or RVC(40)
8537.20	For a voltage exceeding 1,000 V	CTH or RVC(40)
8538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apparatus of heading 85.35, 85.36 or 85.37.	
8538.10	Boards, panels, consoles, desks, cabinets and other bases for the goods of heading 85.37, not equipped with their apparatus	CTH or RVC(40)
8538.90	Other	CTH or RVC(40)
8539	Electric filament or discharge lamps, including sealed beam lamp units and ultra-violet or infra-red lamps; arc-lamps.	
8539.10	Sealed beam lamp units	CTSH or RVC(40)
8539.2	Other filament lamps, excluding ultra-violet or infra-red lamps:	
8539.21	Tungsten halogen	CTSH or RVC(40)
8539.22	Other, of a power not exceeding 200 W and for a voltage exceeding 100 V	CTSH except from subheading 8539.29, or RVC(40)
8539.29	Other	CTSH except from subheading 8539.22, or RVC(40)
8539.3	Discharge lamps, other than ultra-violet lamps:	
8539.31	Fluorescent, hot cathode	CTSH or RVC(40)
8539.32	Mercury or sodium vapour lamps; metal halide lamps	CTSH or RVC(40)
8539.39	Other	CTSH or RVC(40)
8539.4	Ultra-violet or infra-red lamps; arc-lamps:	
8539.41	Arc lamps	CTSH or RVC(40)
8539.49	Other	CTSH or RVC(40)
8539.90	Parts	CTH or RVC(40)
8540	Thermionic, cold cathode or photo-cathode valves and tubes(for example, vacuum or vapour or gas filled valves and tubes, mercury arc rectifying valves and tubes, cathode-ray tubes, television camera tubes).	
8540.1	Cathode-ray television picture tubes, including video monitor cathode-ray tubes:	
8540.11	Colour	CTSH or RVC(40)
8540.12	Monochrome	CTSH or RVC(40)
8540.20	Television camera tubes; image converters and intensifiers; other photo-cathode tubes	CTSH or RVC(40)
8540.40	Data/graphic display tubes, monochrome; data/graphic display tubes, colour, with a phosphor dot screen pitch smaller than 0.4 mm	CTSH or RVC(40)
8540.60	Other cathode-ray tubes	CTSH or RVC(40)
8540.7	Microwave tubes(for example, magnetrons, klystrons, travelling wave tubes, carcinotrons), excluding grid-controlled tube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540.71	Magnetrons	**CTSH or RVC(40)**
8540.79	Other	**CTSH or RVC(40)**
8540.8	Other valves and tubes:	
8540.81	Receiver or amplifier valves and tubes	**CTSH or RVC(40)**
8540.89	Other	**CTSH or RVC(40)**
8540.9	Parts:	
8540.91	Of cathode-ray tubes	**CTSH or RVC(40)**
8540.99	Other	**CTSH or RVC(40)**
8541	Diodes, transistors and similar semiconductor devices; 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s, including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 modules or made up into panels; light emitting diodes; mounted piezo-electric crystals.	
8541.10	Diodes, other than photosensitive or light emitting diodes	**CTSH or RVC(40)**
8541.2	Transistors, other than photosensitive transistors:	
8541.21	With a dissipation rate of less than 1 W	**CTSH or RVC(40)**
8541.29	Other	**CTSH or RVC(40)**
8541.30	Thyristors, diacs and triacs, other than photosensitive devices	**CTSH or RVC(40)**
8541.40	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s, including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 modules or made up into panels; light emitting diodes	**CTSH or RVC(40)**
8541.50	Other semiconductor devices	**CTSH or RVC(40)**
8541.60	Mounted piezo-electric crystals	**CTSH or RVC(40)**
8541.90	Parts	**CTSH or RVC(40)**
8542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8542.3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8542.31	Processors and controllers, whether or not combined with memories, converters, logic circuits, amplifiers, clock and timing circuits, or other circuits	**CTSH or RVC(40)**
8542.32	Memories	**CTSH or RVC(40)**
8542.33	Amplifiers	**CTSH or RVC(40)**
8542.39	Other	**CTSH or RVC(40)**
8542.90	Parts	**CTS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543	Electrical machines and apparatu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8543.10	Particle accelerators	**CTSH or RVC(40)**
8543.20	Signal generators	**CTSH or RVC(40)**
8543.30	Machines and apparatus for electroplating, electrolysis or electrophoresis	**CTSH or RVC(40)**
8543.70	Other machines and apparatus:	**CTSH or RVC(40)**
8543.90	Parts	**CTH or RVC(40)**
8544	Insulated (including enamelled or anodised) wire, cable (including co-axial cable) and other insulated electric conductors; whether or not fitted with connectors; optical fibre cables, made up of individually sheathed fibres, whether or not assembled with electric conductors or fitted with connectors.	
8544.1	Winding wire:	
8544.11	Of copper	**CTH or RVC(40)**
8544.19	Other	**CTH or RVC(40)**
8544.20	Co-axial cable and other co-axial electric conductors	**CTH or RVC(40)**
8544.30	Ignition wiring sets and other wiring sets of a kind used in vehicles, aircraft or ships	**CTH or RVC(40)**
8544.4	Other electric conductors, for a voltage not exceeding 1,000 V:	
8544.42	Fitted with connectors	**CTH or RVC(40)**
8544.49	Other	**CTH or RVC(40)**
8544.60	Other electric conductors, for a voltage exceeding 1,000 V	**CTH or RVC(40)**
8544.70	Optical fibre cables	**CTH or RVC(40)**
8545	Carbon electrodes, carbon brushes, lamp carbons, battery carbons and other articles of graphite or other carbon, with or without metal, of a kind used for electrical purposes.	
8545.1	Electrodes:	
8545.11	Of a kind used for furnaces	**CTH or RVC(40)**
8545.19	Other	**CTH or RVC(40)**
8545.20	Brushes	**CT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545.90	Other	**CTH or RVC(40)**
8546	Electrical insulators of any material.	
8546.10	Of glass	**CTH or RVC(40)**
8546.20	Of ceramics	**CTH or RVC(40)**
8546.90	Other	**CTH or RVC(40)**
8547	Insulating fittings for electrical machines, appliances or equipment, being fitting wholly of insulating material apart from any minor components of metal (for example, threaded sockets) incorporated during moulding solely for purposes of assembly, other than insulators of heading 85.46; electrical conduit tubing and joints therefor, of base metal lined with insulating material.	
8547.10	Insulating fittings of ceramics	**CTH or RVC(40)**
8547.20	Insulating fittings of plastics	**CTH or RVC(40)**
8547.90	Other	**CTH or RVC(40)**
8548	Waste and scrap of primary cells, primary batteries and electric accumulators; spent primary cells, spent primary batteries and spent electric accumulators; electrical parts of machinery or apparatu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8548.10	Waste and scrap of primary cells, primary batteries and electric accumulators; spent primary cells, spent primary batteries and spent electric accumulators	**CTH**
8548.90	Other	**CTH or RVC(40)**
	SECTION XVII VEHICLES, AIRCRAFT, VESSELS AND ASSOCIATED TRANSPORT EQUIPMENT (Chapters 86 – 89)	
86	CHAPTER 86 RAILWAY OR TRAMWAY LOCOMOTIVES, ROLLING-STOCK AND PARTS THEREOF; RAILWAY OR TRAMWAY TRACK FIXTURES AND FITTINGS AND PARTS THEREOF; MECHANICAL (INCLUDING ELECTRO-MECHANICAL) TRAFFIC SIGNALLING EQUIPMENT OF ALL KINDS	
8601	Rail locomotives powered from an external source of electricity or by electric accumulators.	
8601.10	Powered from an external source of electricity	**CTH**
8601.20	Powered by electric accumulators	**CTH**
8602	Other rail locomotives; locomotive tenders.	
8602.10	Diesel-electric locomotives	**CTH**
8602.90	Other	**CTH**
8603	Self-propelled railway or tramway coaches, vans and truck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86.04.	
8603.10	Powered from an external source of electricity	**CTH**
8603.90	Other	**CTH**
8604.00	Railway or tramway maintenance or service vehicles, whether or not self-propelled (for example, workshops, cranes, ballast tampers, trackliners, testing coaches and track inspection vehicles).	**CTH**
8605.00	Railway or tramway passenger coaches, not self-propelled; luggage vans, post office coaches and other special purpose railway or tramway coaches, not self-propelled (excluding those of heading 86.04).	**CTH**
8606	Railway or tramway goods vans and wagons, not self-propelled.	
8606.10	Tank wagons and the like	**CTH**
8606.30	Self-discharging vans and wagons, other than those of subheading 8606.10.	**CTH**
8606.9	Other:	
8606.91	Covered and closed	**CTH**
8606.92	Open, with non-removable sides of a height exceeding 60 cm	**CTH**
8606.99	Other	**CTH**
8607	Parts of railway or tramway locomotives or rolling-stock.	
8607.1	Bogies, bissel-bogies, axles and wheels, and parts thereof:	
8607.11	Driving bogies and bissel-bogies	**CTH**
8607.12	Other bogies and bissel-bogies	**CTH**
8607.19	Other, including parts	**CTH or RVC(40)**
8607.2	Brakes and parts thereof:	
8607.21	Air brakes and parts thereof	**CTH or RVC(40)**
8607.29	Other	**CTH or RVC(40)**
8607.30	Hooks and other coupling devices, buffers, and parts thereof	**CTH or RVC(40)**
8607.9	Other:	
8607.91	Of locomotives	**CTH or RVC(40)**
8607.99	Other	**CT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608.00	Railway or tramway track fixtures and fittings; mechanical (including electro-mechanical) signalling, safety or traffic control equipment for railways, tramways, roads, inland waterways, parking facilities, port installations or airfields; parts of the foregoing.	CTH or RVC(40)
8609.00	Containers (including containers for the transport of fluids) specially designed and equipped for carriage by one or more modes of transport.	CTH or RVC(40)
87	CHAPTER 87 VEHICLES OTHER THAN RAILWAY OR TRAMWAY ROLLING-STOCK, AN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8701	Tractors (other than tractors of heading 87.09).	
8701.10	Pedestrian controlled tractors	CTH and RVC(40)
8701.20	Road tractors for semi-trailers	CTH and RVC(40)
8701.30	Track-laying tractors	CTH and RVC(40)
8701.90	Other	CTH and RVC(40)
8702	Motor vehicles for the transport of ten or more persons, including the driver.	
8702.10	With compression-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 (diesel or semi-diesel)	CTH and RVC(40)
8702.90	Other	CTH and RVC(40)
8703	Motor cars and other motor vehicles princip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87.02), including station wagons and racing cars.	
8703.10	Vehicles specially designed for travelling on snow; golf cars and similar vehicles	CTH and RVC(30/40)
8703.2	Other vehicles, with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reciprocating piston engine:	
8703.21	Of a cylinder capacity not exceeding 1,000 cc	CTH and RVC(30/40)
8703.22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1,000 cc but not exceeding 1,500 cc	CTH and RVC(30/40)
8703.23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1,500 cc but not exceeding 3,000 cc	CTH and RVC(30/40)
8703.24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3,000 cc	CTH and RVC(30/40)
8703.3	Other vehicles, with compression-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 (diesel or semi-diesel):	
8703.31	Of a cylinder capacity not exceeding 1,500 cc	CTH and RVC(30/40)
8703.32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1,500 cc but not exceeding 2,500 cc	CTH and RVC(30/40)
8703.33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2,500 cc	CTH and RVC(30/40)
8703.90	Other	CTH and RVC(30/40)
8704	Motor vehicles for the transport of goods.	
8704.10	Dumpers designed for off-highway use	CTH and RVC(40)
8704.2	Other, with compression-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 (diesel or semi-diesel):	
8704.21	G.V.W. not exceeding 5 tonnes	CTH and RVC(40)
8704.22	G.V.W. exceeding 5 tonnes but not exceeding 20 tonnes	CTH and RVC(40)
8704.23	G.V.W. exceeding 20 tonnes	CTH and RVC(40)
8704.3	Other, with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	
8704.31	G.V.W. not exceeding 5 tonnes	CTH and RVC(40)
8704.32	G.V.W. exceeding 5 tonnes	CTH and RVC(40)
8704.90	Other	CTH and RVC(40)
8705	Special purpose motor vehicles, other than those princip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or goods (for example, breakdown lorries, crane lorries, fire fighting vehicles, concrete-mixer lorries, road sweeper lorries, spraying lorries, mobile workshops, mobile radiological units).	
8705.10	Crane lorries	RVC(30/40)
8705.20	Mobile drilling derricks	RVC(30/40)
8705.30	Fire fighting vehicles	RVC(30/40)
8705.40	Concrete-mixer lorries	RVC(30/40)
8705.90	Other	RVC(30/40)
8706.00	Chassis fitted with engines, for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	RVC(30/40)
8707	Bodies (including cabs), for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	
8707.10	For the vehicles of heading 87.03	RVC(30/40)
8707.90	Other	RVC(30/40)
8708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	
8708.10	Bumpers and parts thereof	CTSH or RVC(40)
8708.2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bodies (including cabs):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708.21	Safety seat belts	CTSH or RVC(40)
8708.29	Other	CTSH or RVC(40)
8708.30	Brakes and servo-brakes; parts thereof	CTSH or RVC(40)
8708.40	Gear boxes and parts thereof	CTSH or RVC(40)
8708.50	Drive-axles with differential, whether or not provided with other transmission components, and non-driving axles; parts thereof	CTSH or RVC(40)
8708.70	Road wheels an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CTSH or RVC(40)
8708.80	Suspension systems and parts thereof (including shock-absorbers)	CTSH or RVC(40)
8708.9	Other parts and accessories:	
8708.91	Radiators and parts thereof	CTSH or RVC(40)
8708.92	Silencers (mufflers) and exhaust pipes; parts thereof	CTSH or RVC(40)
8708.93	Clutches and parts thereof	CTSH or RVC(40)
8708.94	Steering wheels, steering columns and steering boxes; parts thereof	CTSH or RVC(40)
8708.95	Safety airbags with inflater system; parts thereof	CTSH or RVC(40)
8708.99	Other	CTSH or RVC(40)
8709	Works trucks, self-propelled, not fitted with lifting or handling equipment, of the type used in factories, warehouses, dock areas or airports for short distance transport of goods; tractors of the type used on railway station platforms; parts of the foregoing vehicles.	
8709.1	Vehicles:	
8709.11	Electrical	CTH or RVC(40)
8709.19	Other	CTH or RVC(40)
8709.90	Parts	CTH or RVC(40)
8710.00	Tanks and other armoured fighting vehicles, motorised, whether or not fitted with weapons, and parts of such vehicles.	CTH or RVC(40)
8711	Motorcycles (including mopeds) and cycles fitted with an auxiliary motor, with or without side-cars; side-cars.	
8711.10	With reciprocating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 of a cylinder capacity not exceeding 50 cc	CTH or RVC(40)
8711.20	With reciprocating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50 cc but not exceeding 250 cc	CTH or RVC(40)
8711.30	With reciprocating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250 cc but not exceeding 500 cc	CTH or RVC(40)
8711.40	With reciprocating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500 cc but not exceeding 800 cc	CTH or RVC(40)
8711.50	With reciprocating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800 cc	CTH or RVC(40)
8711.90	Other	CTH or RVC(40)
8712.00	Bicycles and other cycles (including delivery tricycles), not motorised.	CTH
8713	Carriages for disabled persons, whether or not motorised or otherwise mechanically propelled.	
8713.10	Not mechanically propelled	CTH or RVC(40)
8713.90	Other	CTH or RVC(40)
8714	Parts and accessories of vehicles of headings 87.11 to 87.13.	
8714.10	Of motor-cycles (including mopeds)	CTH or RVC(40)
8714.20	Of carriages for disabled persons	CTH or RVC(40)
8714.9	Other:	
8714.91	Frames and forks, and parts thereof	CTH or RVC(40)
8714.92	Wheel rims and spokes	CTH or RVC(40)
8714.93	Hubs, other than coaster braking hubs and hub brakes, and free-wheel sprocket-wheels	CTH or RVC(40)
8714.94	Brakes, including coaster braking hubs and hub brakes, and parts thereof	CTH or RVC(40)
8714.95	Saddles	CTH or RVC(40)
8714.96	Pedals and crank-gear, and parts thereof	CTH or RVC(40)
8714.99	Other	CTH or RVC(40)
8715.00	Baby carriages and parts thereof.	CTH or RVC(40)
8716	Trailers and semi-trailers; other vehicles, not mechanically propelled; parts thereof.	
8716.10	Trailers and semi-trailers of the caravan type, for housing or camping	CT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716.20	Self-loading or self-unloading trailers and semi-trailers for agricultural purposes	CTH or RVC(40)
8716.3	Other trailers and semi-trailers for the transport of goods:	
8716.31	Tanker trailers and tanker semi-trailers	CTH or RVC(40)
8716.39	Other	CTH or RVC(40)
8716.40	Other trailers and semi-trailers	CTH or RVC(40)
8716.80	Other vehicles	CTH or RVC(40)
8716.90	Parts	CTH or RVC(40)
88	CHAPTER 88 AIRCRAFT, SPACECRAFT, AND PARTS THEREOF	
8801.00	Balloons and dirigibles; gliders, hang gliders and other non-powered aircraft.	CTH or RVC(40)
8802	Other aircraft (for example, helicopters, aeroplanes); spacecraft (including satellites) and suborbital and spacecraft launch vehicles.	
8802.1	Helicopters:	
8802.11	Of an unladen weight not exceeding 2,000 kg	CTH or RVC(40)
8802.12	Of an unladen weight exceeding 2,000 kg	CTH or RVC(40)
8802.20	Aeroplanes and other aircraft, of an unladen weight not exceeding 2,000 kg	CTH or RVC(40)
8802.30	Aeroplanes and other aircraft, of an unladen weight exceeding 2,000 kg but not exceeding 15,000 kg	CTH or RVC(40)
8802.40	Aeroplanes and other aircraft, of an unladen weight exceeding 15,000 kg	CTH or RVC(40)
8802.60	Spacecraft (including satellites) and suborbital and spacecraft launch vehicles	CTH or RVC(40)
8803	Parts of goods of heading 88.01 or 88.02.	
8803.10	Propellers and rotors and parts thereof	CTH or RVC(40)
8803.20	Under-carriages and parts thereof	CTH or RVC(40)
8803.30	Other parts of aeroplanes or helicopters	CTH or RVC(40)
8803.90	Other	CTH or RVC(40)
8804.00	Parachutes (including dirigible parachutes and paragliders) and rotochutes; parts thereof and accessories thereto.	CTH or RVC(40)
8805	Aircraft launching gear; deck-arrestor or similar gear; ground flying trainers; parts of the foregoing articles.	
8805.10	Aircraft launching gear and parts thereof; deck-arrestor or similar gear and parts thereof	CTH or RVC(40)
8805.2	Ground flying trainers and parts thereof:	
8805.21	Air combat simulators and parts thereof	CTH or RVC(40)
8805.29	Other	CTH or RVC(40)
89	CHAPTER 89 SHIPS, BOATS AND FLOATING STRUCTURES	
8901	Cruise ships, excursion boats, ferry-boats, cargo ships, barges and similar vessels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or goods.	
8901.10	Cruise ships, excursion boats and similar vessels princip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ferry-boats of all kinds	CC or RVC(40)
8901.20	Tankers	CC or RVC(40)
8901.30	Refrigerated vessels, other than those of subheading 8901.20	CC or RVC(40)
8901.90	Other vessels for the transport of goods and other vessels for the transport of both persons and goods	CC or RVC(40)
8902.00	Fishing vessels; factory ships and other vessels for processing or preserving fishery products.	CC or RVC(40)
8903	Yachts and other vessels for pleasure or sports; rowing boats and canoes.	
8903.10	Inflatable	CTH
8903.9	Other:	
8903.91	Sailboats, with or without auxiliary motor	CTH
8903.92	Motorboats, other than outboard motorboats	CTH
8903.99	Other	CTH
8904.00	Tugs and pusher craft.	CC or RVC(40)
8905	Light-vessels, fire-floats, dredgers, floating cranes, and other vessels the navigability of which is subsidiary to their main function; floating docks; floating or submersible drilling or production platforms.	
8905.10	Dredgers	CC or RVC(40)
8905.20	Floating or submersible drilling or production platforms	CC or RVC(40)
8905.90	Other	CC or RVC(40)
8906	Other vessels, including warships and lifeboats other than rowing boats.	
8906.10	War ships	CTH
8906.90	Other	CTH
8907	Other floating structures (for example, rafts, tanks, coffer-dams, landing stages, buoys and beacons).	
8907.10	Inflatable rafts	CTH
8907.90	Other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8908.00	Vessels and other floating structures for breaking up.	CTH
	SECTION XVIII OPTICAL,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MEASURING, CHECKING, PRECISION, MEDICAL OR SURGICAL INSTRUMENTS AND APPARATUS; CLOCKS AND WATCHES; MUSICAL INSTRUMENT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Chapters 90 – 92)	
90	CHAPTER 90 OPTICAL,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MEASURING, CHECKING, PRECISION, MEDICAL OR SURGICAL INSTRUMENTS AND APPARATU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9001	Optical fibres and optical fibre bundles; optical fibre cable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85.44; sheets and plates of polarising material; lenses (including contact lenses), prisms, mirrors and other optical elements, of any material, unmounted, other than such elements of glass not optically worked.	
9001.10	Optical fibres, optical fibre bundles and cables	CTH or RVC(40)
9001.20	Sheets and plates of polarising material	CTH or RVC(40)
9001.30	Contact lenses	CTH or RVC(40)
9001.40	Spectacle lenses of glass	CTH or RVC(40)
9001.50	Spectacle lenses of other materials	CTH or RVC(40)
9001.90	Other	CTH or RVC(40)
9002	Lenses, prisms, mirrors and other optical elements, of any material, mounted, being parts of or fittings for instruments or apparatus, other than such elements of glass not optically worked.	
9002.1	Objective lenses:	
9002.11	For cameras, projectors or photographic enlargers or reducers	CTSH
9002.19	Other	CTSH
9002.20	Filters	CTSH
9002.90	Other	CTSH
9003	Frames and mountings for spectacles, goggles or the like, and parts thereof.	
9003.1	Frames and mountings:	
9003.11	Of plastics	CTH or RVC(40)
9003.19	Of other materials	CTH or RVC(40)
9003.90	Parts	CTH
9004	Spectacles, goggles and the like, corrective, protective or other.	
9004.10	Sun-glasses	CC or RVC(40)
9004.90	Other	CC or RVC(40)
9005	Binoculars, monoculars, other optical telescopes, and mountings therefor; other astronomical instruments and mountings therefor, but not including instruments for radio-astronomy.	
9005.10	Binoculars	CTSH
9005.80	Other instruments	CTSH
9005.90	Parts and accessories (including mountings)	CTH or RVC(40)
9006	Photographic (other than cinematographic) cameras; photographic flashlight apparatus and flashbulbs other than discharge lamps of heading 85.39.	
9006.10	Cameras of a kind used for preparing printing plates or cylinders	CTSH
9006.30	Cameras specially designed for underwater use, for aerial survey or for medical or surgical examination of internal organs; comparison cameras for forensic or criminological purposes	CTSH
9006.40	Instant print cameras	CTSH
9006.5	Other cameras:	
9006.51	With a through-the-lens viewfinder(single lens reflex (SLR)), for roll film of a width not exceeding 35 ㎜	CTSH
9006.52	Other, for roll film of a width less than 35 ㎜	CTSH
9006.53	Other, for roll film of a width of 35 ㎜	CTSH
9006.59	Other	CTSH
9006.6	Photographic flashlight apparatus and flashbulbs:	
9006.61	Discharge lamp("electronic") flashlight apparatus	CTSH
9006.69	Other	CTSH
9006.9	Parts and accessories:	
9006.91	For cameras	CTH or RVC(40)
9006.99	Other	CTH or RVC(40)
9007	Cinematographic cameras and projectors,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sound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9007.10	Cameras	CTSH
9007.20	Projectors	CTSH
9007.9	Parts and accessories:	
9007.91	For cameras	CTH or RVC(40)
9007.92	For projectors	CT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9008	Image projectors, other than cinematographic; photographic (other than cinematographic) enlargers and reducers.	
9008.50	Projectors, enlargers and reducers	CTSH or RVC(40)
9008.90	Parts and accessories	CTH or RVC(40)
9010	Apparatus and equipment for photographic (including cinematographic) laboratorie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negatoscopes; projection screens.	
9010.10	Apparatus and equipment for automatically developing photographic (including cinematographic) film or paper in rolls or for automatically exposing developed film to rolls of photographic paper	CTSH
9010.50	Other apparatus and equipment for photographic (including cinematographic) laboratories; negatoscopes	CTSH
9010.60	Projection screens	CTSH
9010.90	Parts and accessories	CTH or RVC(40)
9011	Compound optical microscopes, including those for photomicrography, cinephotomicrography or microprojection.	
9011.10	Stereoscopic microscopes	CTSH
9011.20	Other microscopes, for photomicrography, cinephotomicrography or microprojection	CTSH
9011.80	Other microscopes	CTSH
9011.90	Parts and accessories	CTH or RVC(40)
9012	Microscopes other than optical microscopes; diffraction apparatus.	
9012.10	Microscopes other than optical microscopes; diffraction apparatus	CTSH
9012.90	Parts and accessories	CTH or RVC(40)
9013	Liquid crystal devices not constituting articles provided for more specifically in other headings; lasers, other than laser diodes; other optical appliances and instrument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9013.10	Telescopic sights for fitting to arms; periscopes; telescopes designed to form parts of machines, appliances, instruments or apparatus of this Chapter or Section XVI	CTSH
9013.20	Lasers, other than laser diodes	CTSH
9013.80	Other devices, appliances and instruments	CTSH
9013.90	Parts and accessories	CTH or RVC(40)
9014	Direction finding compasses; other navigational instruments and appliances.	
9014.10	Direction finding compasses	CTSH
9014.20	Instruments and appliances for aeronautical or space navigation (other then compasses)	CTSH
9014.80	Other instruments and appliances	CTSH
9014.90	Parts and accessories	CTH or RVC(40)
9015	Surveying (including photogrammetrical surveying), hydrographic, oceanographic, hydrological, meteorological or geophysical instruments and appliances, excluding compasses; rangefinders.	
9015.10	Rangefinders	CTSH
9015.20	Theodolites and tachymeters (tacheometers)	CTSH
9015.30	Levels	CTSH
9015.40	Photogrammetrical surveying instruments and appliances	CTSH
9015.80	Other instruments and appliances	CTSH
9015.90	Parts and accessories	CTH or RVC(40)
9016.00	Balances of a sensitivity of 5cg or better, with or without weights.	CTH or RVC(40)
9017	Drawing, marking-out or mathematical calculating instruments (for example, drafting machines, pantographs, protractors, drawing sets, slide rules, disc calculators); instruments for measuring length, for use in the hand (for example, measuring rods and tapes, micrometers, calliper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9017.10	Drafting tables and machines, whether or not automatic	CTSH
9017.20	Other drawing, marking-out or mathematical calculating instruments	CTSH
9017.30	Micrometers, callipers and gauges	CTH or RVC(40)
9017.80	Other instruments	CTH or RVC(40)
9017.90	Parts and accessories	CTH or RVC(40)
9018	Instruments and appliances used in medical, surgical, dental or veterinary sciences, including scintigraphic apparatus, other electro-medical apparatus and sight-testing instruments.	
9018.1	Electro-diagnostic apparatus (including apparatus for functional exploratory examination or for checking physiological parameters):	
9018.11	Electro-cardiographs	CT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9018.12	Ultrasonic scanning apparatus	CTH or RVC(40)
9018.13	Magnetic resonance imaging apparatus	CTH or RVC(40)
9018.14	Scintigraphic apparatus	CTH or RVC(40)
9018.19	Other	CTH or RVC(40)
9018.20	Ultra-violet or infra-red ray apparatus	CTH or RVC(40)
9018.3	Syringes, needles, catheters, cannulae and the like:	
9018.31	Syringes, with or without needles	CTH or RVC(40)
9018.32	Tubular metal needles and needles for sutures	CTH or RVC(40)
9018.39	Other	CTH or RVC(40)
9018.4	Other instruments and appliances, used in dental sciences:	
9018.41	Dental drill engines, whether or not combined on a single base with other dental equipment	CTH or RVC(40)
9018.49	Other	CTH or RVC(40)
9018.50	Other ophthalmic instruments and appliances	CTH or RVC(40)
9018.90	Other instruments and appliances	CTH or RVC(40)
9019	Mechano-therapy appliances; massage apparatus; psychological aptitude-testing apparatus; ozone therapy, oxygen therapy, aerosol therapy, artificial respiration or other therapeutic respiration apparatus.	
9019.10	Mechano-therapy appliances; massage apparatus; psychological aptitude-testing apparatus	CTH or RVC(40)
9019.20	Ozone therapy, oxygen therapy, aerosol therapy, artificial respiration or other therapeutic respiration apparatus	CTH or RVC(40)
9020.00	Other breathing appliances and gas masks, excluding protective masks having neither mechanical parts nor replaceable filters.	CTH or RVC(40)
9021	Orthopaedic appliances, including crutches, surgical belts and trusses; splints and other fracture appliances; artificial parts of the body; hearing aids and other appliances which are worn or carried, or implanted in the body, to compensate for a defect or disability.	
9021.10	Orthopaedic or fracture appliances	CTH or RVC(40)
9021.2	Artificial teeth and dental fittings:	
9021.21	Artificial teeth	CTH or RVC(40)
9021.29	Other	CTH or RVC(40)
9021.3	Other artificial parts of the body:	
9021.31	Artificial joints	CTH or RVC(40)
9021.39	Other	CTH or RVC(40)
9021.40	Hearing aids, excluding parts and accessories	CTH or RVC(40)
9021.50	Pacemakers for stimulating heart muscles, excluding parts and accessories	CTH or RVC(40)
9021.90	Other	CTH or RVC(40)
9022	Apparatus based on the use of X-rays or of alpha, beta or gamma radiations, whether or not for medical, surgical, dental or veterinary uses, including radiography or radiotherapy apparatus, X-ray tubes and other X-ray generators, high tension generators, control panels and desks, screens, examination or treatment tables, chairs and the like.	
9022.1	Apparatus based on the use of X-rays, whether or not for medical, surgical, dental or veterinary uses, including radiography or radiotherapy apparatus:	
9022.12	Computed tomography apparatus	CTSH
9022.13	Other, for dental uses	CTSH
9022.14	Other, for medical, surgical or veterinary uses	CTSH
9022.19	For other uses	CTSH
9022.2	Apparatus based on the use of alpha, beta or gamma radiations, whether or not for medical, surgical, dental or veterinary uses, including radiography or radiotherapy apparatus:	
9022.21	For medical, surgical, dental or veterinary uses	CTSH
9022.29	For other uses	CTSH
9022.30	X-ray tubes	CTSH
9022.90	Other, including parts and accessories	CTH or RVC(40)
9023.00	Instruments, apparatus and models, designed for demonstrational purposes (for example, in education or exhibitions), unsuitable for other uses.	CTH or RVC(40)
9024	Machines and appliances for testing the hardness, strength, compressibility, elasticity or other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s (for example, metals, wood, textiles, paper, plastics).	
9024.10	Machines and appliances for testing metals	CTSH
9024.80	Other machines and appliances	CTSH
9024.90	Parts and accessories	CT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9025	Hydrometers and similar floating instruments, thermometers, pyrometers, barometers, hygrometers and psychrometers, recording or not, and any combination of these instruments.	
9025.1	Thermometers and pyrometers not combined with other instruments:	
9025.11	Liquid-filled, for direct reading	CTSH
9025.19	Other	CTSH
9025.80	Other instruments	CTSH
9025.90	Parts and accessories	CTH or RVC(40)
9026	Instruments and apparatus for measuring or checking the flow, level, pressure or other variables of liquids or gases (for example, flow meters, level gauges, manometers, heat meters), excluding instruments and apparatus of heading 90.14, 90.15, 90.28 or 90.32	
9026.10	For measuring or checking the flow or level of liquids	CTH or RVC(40)
9026.20	For measuring or checking pressure	CTH or RVC(40)
9026.80	Other instruments or apparatus	CTH or RVC(40)
9026.90	Parts and accessories	CTH or RVC(40)
9027	Instruments and apparatus for physical or chemical analysis (for example, polarimeters, refractometers, spectrometers, gas or smoke analysis apparatus); instruments and apparatus for measuring or checking viscosity, porosity, expansion, surface tension or the like; instruments and apparatus for measuring or checking quantities of heat, sound or light (including exposure meters); microtomes.	
9027.10	Gas or smoke analysis apparatus	CTSH
9027.20	Chromatographs and electrophoresis instruments	CTSH
9027.30	Spectrometers spectrophotometers and spectrographs using optical radiations (UV, visible, IR)	CTSH
9027.50	Other instruments and apparatus using optical radiations (UV, visible, IR)	CTSH
9027.80	Other instruments and apparatus	CTSH
9027.90	Microtomes; parts and accessories	CTH or RVC(40)
9028	Gas, liquid or electricity supply or production meters, including calibrating meters therefor.	
9028.10	Gas meters	CTSH
9028.20	Liquid meters	CTSH
9028.30	Electricity meters	CTSH
9028.90	Parts and accessories	CTH or RVC(40)
9029	Revolution counters, production counters, taximeters, mileometers, pedometers and the like; speed indicators and tachometer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90.14 or 90.15; stroboscopes.	
9029.10	Revolution counters, production counters, taximeters, mileometers pedometers and the like	CTH or RVC(40)
9029.20	Speed indicators and tachometers; stroboscopes	CTH or RVC(40)
9029.90	Parts and accessories	CTH or RVC(40)
9030	Oscilloscopes, spectrum analysers and other instruments and apparatus for measuring or checking electrical quantities, excluding meters of heading 90.28; instruments and apparatus for measuring or detecting alpha, beta, gamma, X-ray, cosmic or other ionising radiations.	
9030.10	Instruments and apparatus for measuring or detecting ionising radiations	CTSH
9030.20	Oscilloscopes and oscillographs	CTSH
9030.3	Other instruments and apparatus, for measuring or checking voltage, current, resistance or power:	
9030.31	Multimeters without a recording device	CTSH
9030.32	Multimeters with a recording device	CTSH
9030.33	Other, without a recording device	CTSH
9030.39	Other, with a recording device	CTSH
9030.40	Other instruments and apparatus specially designed for telecommunications (for example, crosstalk meters, gain measuring instruments, distortion factor meters, psophometers)	CTSH
9030.8	Other instruments and apparatus:	
9030.82	For measuring or checking semiconductor wafers or devices	CTSH
9030.84	Other, with a recording device	CTSH
9030.89	Other	CTSH
9030.90	Parts and accessories	CTH or RVC(40)
9031	Measuring or checking instruments, appliances and machine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profile projectors.	
9031.10	Machines for balancing mechanical parts	CTSH or RVC(40)
9031.20	Test benches	CTSH or RVC(40)
9031.4	Other optical instruments and appliances:	
9031.41	For inspecting semiconductor wafers or devices or for inspecting photomasks or reticles used in manufacturing semiconductor devices	CTS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9031.49	Other	CTSH or RVC(40)
9031.80	Other instruments, appliances and machines	CTSH or RVC(40)
9031.90	Parts and accessories	CTH or RVC(40)
9032	Automatic regulating or controlling instruments and apparatus.	
9032.10	Thermostats	CTSH
9032.20	Manostats	CTSH
9032.8	Other instruments and apparatus:	
9032.81	Hydraulic or pneumatic	CTSH
9032.89	Other	CTSH
9032.90	Parts and accessories	CTH or RVC(40)
9033.00	Parts and accessorie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for machines, appliances, instruments or apparatus of Chapter 90.	CTH or RVC(40)
91	CHAPTER 91 CLOCKS AND WATCHES AND PARTS THEREOF	
9101	Wrist-watches, pocket-watches and other watches, including stop-watches, with case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9101.1	Wrist-watches, electrically operated,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a stop-watch facility:	
9101.11	With mechanical display only	CTH
9101.19	Other	CTH
9101.2	Other wrist-watches,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a stop-watch facility:	
9101.21	With automatic winding	CTH
9101.29	Other	CTH
9101.9	Other:	
9101.91	Electrically operated	CTH
9101.99	Other	CTH
9102	Wrist-watches, pocket-watches and other watches, including stop-watche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91.01.	
9102.1	Wrist-watches, electrically operated,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a stop-watch facility:	
9102.11	With mechanical display only	CTH
9102.12	With opto-electronic display only	CTH
9102.19	Other	CTH
9102.2	Other wrist-watches,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a stop-watch facility:	
9102.21	With automatic winding	CTH
9102.29	Other	CTH
9102.9	Other:	
9102.91	Electrically operated	CTH
9102.99	Other	CTH
9103	Clocks with watch movements, excluding clocks of heading 91.04.	
9103.10	Electrically operated	CTH
9103.90	Other	CTH
9104.00	Instrument panel clocks and clocks of a similar type for vehicles, aircraft, spacecraft or vessels.	CTH
9105	Other clocks.	
9105.1	Alarm clocks:	
9105.11	Electrically operated	CTH
9105.19	Other	CTH
9105.2	Wall clocks:	
9105.21	Electrically operated	CTH
9105.29	Other	CTH
9105.9	Other:	
9105.91	Electrically operated	CTH
9105.99	Other	CTH
9106	Time of day recording apparatus and apparatus for measuring, recording or otherwise indicating intervals of time, with clock or watch movement or with synchronous motor(for example, time-registers, time-recorders).	
9106.10	Time-registers; time-recorders	CTH
9106.90	Other	CTH
9107.00	Time switches with clock or watch movement or with synchronous motor.	CTH
9108	Watch movements, complete and assembled.	
9108.1	Electrically operated:	
9108.11	With mechanical display only or with a device to which a mechanical display can be incorporated	CTH
9108.12	With opto-electronic display only	CTH
9108.19	Other	CTH
9108.20	With automatic winding	CTH
9108.90	Other	CTH
9109	Clock movements, complete and assembled.	
9109.10	Electrically operated	CTH
9109.90	Other	CTH
9110	Complete watch or clock movements, unassembled or partly assembled (movement sets); incomplete watch or clock movements, assembled; rough watch or clock movements.	
9110.1	Of watches:	
9110.11	Complete movements, unassembled or partly assembled(movement sets)	CT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9110.12	Incomplete movements, assembled	CTH or RVC(40)
9110.19	Rough movements	CTH or RVC(40)
9110.90	Other	CTH or RVC(40)
9111	Watch cases and parts thereof.	
9111.10	Cases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CTH or RVC(40)
9111.20	Cases of base metal, whether or not gold-or silver-plated	CTH or RVC(40)
9111.80	Other cases	CTH or RVC(40)
9111.90	Parts	CTH or RVC(40)
9112	Clock cases and cases of a similar type for other goods of this Chapter, and parts thereof.	
9112.20	Cases	CTH or RVC(40)
9112.90	Parts	CTH or RVC(40)
9113	Watch straps, watch bands and watch bracelets, and parts thereof.	
9113.10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CTH or RVC(40)
9113.20	Of base metal, whether or not gold-or silver-plated	CTH or RVC(40)
9113.90	Other	CTH or RVC(40)
9114	Other clock or watch parts.	
9114.10	Springs, including hair-springs	CTH
9114.30	Dials	CTH
9114.40	Plates and bridges	CTH
9114.90	Other	CTH
92	CHAPTER 92 MUSICAL INSTRUMENTS; PARTS AND ACCESSORIES OF SUCH ARTICLES	
9201	Pianos, including automatic pianos; harpsichords and other keyboard stringed instruments.	
9201.10	Upright pianos	CTH
9201.20	Grand pianos	CTH
9201.90	Other	CTH
9202	Other string musical instruments(for example, guitars, violins, harps).	
9202.10	Played with a bow	CTH
9202.90	Other	CTH
9205	Wind musical instruments (for example, keyboard pipe organs, accordions, clarinets, trumpets, bagpipes), other than fairground organs and mechanical street organs.	
9205.10	Brass-wind instruments	CTH
9205.90	Other	CTH
9206.00	Percussion musical instruments(for example, drums, xylophones, cymbals, castanets, maracas).	CTH
9207	Musical instruments, the sound of which is produced, or must be amplified, electrically (for example, organs, guitars, accordions).	
9207.10	Keyboard instruments, other than accordions	CTH or RVC(40)
9207.90	Other	CTH or RVC(40)
9208	Musical boxes, fairground organs, mechanical street organs, mechanical singing birds, musical saws and other musical instruments not falling within any other heading of this Chapter; decoy calls of all kinds; whistles, call horns and other mouth-blown sound signalling instruments.	
9208.10	Musical boxes	CTH
9208.90	Other	CTH
9209	Parts (for example, mechanisms for musical boxes) and accessories (for example, cards, discs and rolls for mechanical instruments) of musical instruments; metronomes, tuning forks and pitch pipes of all kinds.	
9209.30	Musical instrument strings	CTH
9209.9	Other:	
9209.91	Parts and accessories for pianos	CTH
9209.92	Parts and accessories for the musical instruments of heading 92.02	CTH
9209.94	Parts and accessories for the musical instruments of heading 92.07	CTH
9209.99	Other	CTH
	SECTION XIX ARMS AND AMMUNITION;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Chapter 93)	
93	CHAPTER 93 ARMS AND AMMUNITION;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9301	Military weapons, other than revolvers, pistols and the arms of heading 93.07.	
9301.10	Artillery weapons (for example, guns, howitzers and mortars)	CTH or RVC(40)
9301.20	Rocket launchers; flame-throwers; grenade launchers; torpedo tubes and similar projectors	CTH or RVC(40)
9301.90	Other	CT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9302.00	Revolvers and pistol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93.03 or 93.04.	CTH or RVC(40)
9303	Other firearms and similar devices which operate by the firing of an explosive charge(for example, sporting shotguns and rifles, muzzle-loading firearms, Very pistols and other devices designed to project only signal flares, pistols and revolvers for firing blank ammunition, captive-bolt humane killers, line-throwing guns).	
9303.10	Muzzle-loading firearms	CTH or RVC(40)
9303.20	Other sporting, hunting or target-shooting shotguns, including combination shotgun-rifles	CTH or RVC(40)
9303.30	Other sporting, hunting or target-shooting rifles	CTH or RVC(40)
9303.90	Other	CTH or RVC(40)
9304.00	Other arms(for example, spring, air or gas guns and pistols, truncheons), excluding those of heading 93.07.	CTH or RVC(40)
9305	Parts and accessories of articles of headings 93.01 to 93.04.	
9305.10	Of revolvers or pistols	CTH or RVC(40)
9305.20	Of shotguns or rifles of heading 93.03	CTH or RVC(40)
9305.9	Other:	
9305.91	Of military weapons of heading 93.01	CTH or RVC(40)
9305.99	Other	CTH or RVC(40)
9306	Bombs, grenades, torpedoes, mines, missiles and similar munitions of war and parts thereof; cartridges and other ammunition and projectiles and parts thereof, including shot and cartridge wads.	
9306.2	Shotgun cartridges and parts thereof; air gun pellets:	
9306.21	Cartridges	CTH or RVC(40)
9306.29	Other	CTH or RVC(40)
9306.30	Other cartridges and parts thereof	CTH or RVC(40)
9306.90	Other	CTH or RVC(40)
9307.00	Swords, cutlasses, bayonets, lances and similar arms and parts thereof and scabbards and sheaths therefor.	CTH or RVC(40)
SECTION XX MISCELLANEOUS MANUFACTURED ARTICLES (Chapters 94 – 96)		
94	CHAPTER 94 FURNITURE; BEDDING, MATTRESSES, MATTRESS SUPPORTS, CUSHIONS AND SIMILAR STUFFED FURNISHINGS; LAMPS AND LIGHTING FITTING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ILLUMINATED SIGNS, ILLUMINATED NAME-PLATES AND THE LIKE; PREFABRICATED BUILDINGS	
9401	Seat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94.02), whether or not convertible into beds, and parts thereof.	
9401.10	Seats of a kind used for aircraft	CTH or RVC(40)
9401.20	Seats of a kind used for motor vehicles	CTH or RVC(40)
9401.30	Swivel seats with variable height adjustment	CTH or RVC(40)
9401.40	Seats other than garden seats or camping equipment, convertible into beds	CTH or RVC(40)
9401.5	Seats of cane, osier, bamboo or similar materials:	
9401.51	Of bamboo or rattan	CTH or RVC(40)
9401.59	Other	CTH or RVC(40)
9401.6	Other seats, with wooden frames:	
9401.61	Upholstered	CTH or RVC(40)
9401.69	Other	CTH or RVC(40)
9401.7	Other seats, with metal frames:	
9401.71	Upholstered	CTH or RVC(40)
9401.79	Other	CTH or RVC(40)
9401.80	Other seats	CTH or RVC(40)
9401.90	Parts	CTH or RVC(40)
9402	Medical, surgical, dental or veterinary furniture (for example, operating tables, examination tables, hospital beds with mechanical fittings, dentists' chairs); barbers' chairs and similar chairs, having rotating as well as both reclining and elevating movement; parts of the foregoing articles.	
9402.10	Dentists', barbers' or similar chairs and parts thereof	CTH or RVC(40)
9402.90	Other	CTH or RVC(40)
9403	Other furniture and parts thereof.	
9403.10	Metal furniture of a kind used in offices	CTH or RVC(40)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9403.20	Other metal furniture	CTH or RVC(40)
9403.30	Wooden furniture of a kind used in offices	CTH or RVC(40)
9403.40	Wooden furniture of a kind used in the kitchen	CTH or RVC(40)
9403.50	Wooden furniture of a kind used in the bedroom	CTH or RVC(40)
9403.60	Other wooden furniture	CTH or RVC(40)
9403.70	Furniture of plastics	CTH or RVC(40)
9403.8	Furniture of other materials, including cane, osier, bamboo or similar materials:	
9403.81	Of bamboo or rattan	CTH or RVC(40)
9403.89	Other	CTH or RVC(40)
9403.90	Parts	CTH or RVC(40)
9404	Mattress supports; articles of bedding and similar furnishing (for example, mattresses, quilts, eiderdowns, cushions, pouffes and pillows) fitted with springs or stuffed or internally fitted with any material or of cellular rubber or plastics, whether or not covered.	
9404.10	Mattress supports	CTH
9404.2	Mattresses:	
9404.21	Of cellular rubber or plastics, whether or not covered	CTH
9404.29	Of other materials	CTH
9404.30	Sleeping bags	CTH
9404.90	Other	CTH
9405	Lamps and lighting fittings including searchlights and spotlights and parts thereof,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illuminated signs, illuminated name-plates and the like, having a permanently fixed light source, and parts thereof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9405.10	Chandeliers and other electric ceiling or wall lighting fittings, excluding those of a kind used for lighting public open spaces or thoroughfares	CTH or RVC(40)
9405.20	Electric table, desk, bedside or floor-standing lamps	CTH or RVC(40)
9405.30	Lighting sets of a kind used for Christmas trees	CTH or RVC(40)
9405.40	Other electric lamps and lighting fitting	CTH or RVC(40)
9405.50	Non-electrical lamps and lighting fittings	CTH or RVC(40)
9405.60	Illuminated signs, illuminated name-plates and the like	CTH or RVC(40)
9405.9	Parts:	
9405.91	Of glass	CTH or RVC(40)
9405.92	Of plastics	CTH or RVC(40)
9405.99	Other	CTH or RVC(40)
9406.00	Prefabricated buildings.	CTH
95	CHAPTER 95 TOYS, GAMES AND SPORTS REQUISITE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9503.00	Tricycles, scooters, pedal cars and similar wheeled toys; dolls' carriages; dolls; other toys; reduced-size ("scale") models and similar recreational models, working or not; puzzles of all kinds.	CTH or RVC(40)
9504	Video game consoles and machines, articles for funfair, table or parlour games, including pintables, billiards, special tables for casino games and automatic bowling alley equipment.	
9504.20	Articles and accessories for billiards of all kinds	CTH
9504.30	Other games, operated by coins, banknotes, bank cards, tokens or by any other means of payment, other than automatic bowling alley equipment	CTH or RVC(40)
9504.40	Playing cards	CTH
9504.50	Video game consoles and machines, other than those of subheading 9504.30	CTH or RVC(40)
9504.90	Other	CTH or RVC(40)
9505	Festive, carnival or other entertainment articles, including conjuring tricks and novelty jokes.	
9505.10	Articles for Christmas festivities	CTSH
9505.90	Other	CTSH
9506	Articles and equipment for general physical exercise, gymnastics, athletics, other sports (including table-tennis) or outdoor game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swimming pools and paddling pools.	
9506.1	Snow-skis and other snow-ski equipment:	
9506.11	Skis	CTH
9506.12	Ski-fastenings (ski-bindings)	CTH
9506.19	Other	CTH
9506.2	Water-skis, surf-boards, sailboards and other water-sport equipment:	
9506.21	Sailboards	CTH
9506.29	Other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9506.3	Golf clubs and other golf equipment:	
9506.31	Clubs, complete	CTH or RVC(40)
9506.32	Balls	CTH
9506.39	Other	CTH
9506.40	Articles and equipment for table-tennis	CTH
9506.5	Tennis, badminton or similar rackets, whether or not strung:	
9506.51	Lawn-tennis rackets, whether or not strung	CTH
9506.59	Other	CTH
9506.6	Balls, other than golf balls and table-tennis balls:	
9506.61	Lawn-tennis balls	CTH
9506.62	Inflatable	CTH
9506.69	Other	CTH
9506.70	Ice skates and roller skates, including skating boots with skates attached	CTH
9506.9	Other:	
9506.91	Articles and equipment for general physical exercise, gymnastics or athletics	CTH
9506.99	Other	CTH
9507	Fishing rods, fish-hooks and other line fishing tackle; fish landing nets, butterfly nets and similar nets; decoy "bird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92.08 or 97.05) and similar hunting or shooting requisites.	
9507.10	Fishing rods	CTH
9507.20	Fish-hooks, whether or not snelled	CTH
9507.30	Fishing reels	CTH
9507.90	Other	CTH
9508	Roundabouts, swings, shooting galleries and other fairground amusements; travelling circuses, travelling menageries; travelling theatres.	
9508.10	Travelling circuses and travelling menageries	CTH
9508.90	Other	CTH
96	CHAPTER 96 MISCELLANEOUS MANUFACTURED ARTICLES	
9601	Worked ivory, bone, tortoise-shell, horn, antlers, coral, mother-of-pearl and other animal carving material, and articles of these materials(including articles obtained by moulding).	
9601.10	Worked ivory and articles of ivory	CTH
9601.90	Other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9602.00	Worked vegetable or mineral carving material and articles of these materials; moulded or carved articles of wax, of stearin, of natural gums or natural resins or of modelling pastes, and other moulded or carved articl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worked, unhardened gelatin (except gelatin of heading 35.03) and articles of unhardened gelatin.	CTH or RVC(40)
9603	Brooms, brushes (including brushes constituting parts of machines, appliances or vehicles), hand-operated mechanical floor sweepers, not motorised, mops and feather dusters; prepared knots and tufts for broom or brush making; paint pads and rollers; squeegees (other than roller squeegees).	
9603.10	Brooms and brushes, consisting of twigs or other vegetable materials bound together, with or without handles	CTH
9603.2	Tooth brushes, shaving brushes, hair brushes, nail brushes, eyelash brushes and other toilet brushes for use on the person including such brushes constituting parts of appliances:	
9603.21	Tooth brushes, including dental-plate brushes	CTH
9603.29	Other	CTH
9603.30	Artists' brushes, writing brushes and similar brushes for the application of cosmetics	CTH
9603.40	Paint, distemper, varnish or similar brushes (other than brushes of subheading 9603.30); paint pads and rollers	CTH
9603.50	Other brushes constituting parts of machines, appliances or vehicles	CTH
9603.90	Other	CTH
9604.00	Hand sieves and hand riddles.	CTH
9605.00	Travel sets for personal toilet, sewing or shoe or clothes cleaning.	CTH
9606	Buttons, press-fasteners, snapfasteners and press-studs, button moulds and other parts of these articles; button blanks.	
9606.10	Press-fasteners, snap-fasteners and press-studs and parts therefor	CTH
9606.2	Buttons:	
9606.21	Of plastics, not covered with textile material	CTH or RVC(40)
9606.22	Of base metal, not covered with textile material	CTH or RVC(40)
9606.29	Other	CTH or RVC(40)
9606.30	Button moulds and other parts of buttons; button blanks	CTH
9607	Slide fasteners and parts thereof.	
9607.1	Slide fasteners:	
9607.11	Fitted with chain scoops of base metal	CTS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9607.19	Other	CTSH
9607.20	Parts	CTH
9608	Ball point pens; felt tipped and other porous-tipped pens and markers; fountain pens, stylograph pens and other pens; duplicating stylos; propelling or sliding pencils; pen-holders, pencil-holders and similar holders; parts (including caps and clips) of the foregoing article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96.09.	
9608.10	Ball point pens	CTSH
9608.20	Felt tipped and other porous-tipped pens and markers	CTSH
9608.30	Fountain pens, stylograph pens and other pens	CTSH or RVC(40)
9608.40	Propelling or sliding pencils	CTSH
9608.50	Sets of articles from two or more of the foregoing subheadings	CTH or RVC(40)
9608.60	Refills for ball point pens, comprising the ball point and ink-reservoir	CTH or RVC(40)
9608.9	Other:	
9608.91	Pen nibs and nib points	CTH
9608.99	Other	CTH
9609	Pencils(other than pencils of heading 96.08), crayons, pencil leads, pastels, drawing charcoals, writing or drawing chalks and tailors' chalks.	
9609.10	Pencils and crayons, with leads encased in a rigid sheath	CTH
9609.20	Pencil leads, black or coloured	CTH
9609.90	Other	CTH
9610.00	Slates and boards, with writing or drawing surfaces, whether or not framed.	CTH
9611.00	Date, sealing or numbering stamps, and the like (including devices for printing or embossing labels), designed for operating in the hand; hand-operated composing sticks and hand printing sets incorporating such composing sticks.	CTH
9612	Typewriter or similar ribbons, inked or otherwise prepared for giving impressions, whether or not on spools or in cartridges; ink-pads, whether or not inked, with or without boxes.	
9612.10	Ribbons	CTH
9612.20	Ink-pads	CTH
9613	Cigarette lighters and other lighters, whether or not mechanical or electrical, and parts thereof other than flints and wicks.	
9613.10	Pocket lighters, gas fuelled, non-refillable	CTH or RVC(40)
9613.20	Pocket lighters, gas fuelled, refillable	CTH or RVC(40)
9613.80	Other lighters	CTH or RVC(40)
9613.90	Parts	CTH
9614.00	Smoking pipes (including pipe bowls) and cigar or cigarette holders, and parts thereof.	CTH
9615	Combs, hair-slides and the like; hairpins, curling pins, curling grips, hair-curlers and the like, other than those of heading 85.16, and parts thereof.	
9615.1	Combs, hair-slides and the like:	
9615.11	Of hard rubber or plastics	CTH or RVC(40)
9615.19	Other	CTH or RVC(40)
9615.90	Other	CTH
9616	Scent sprays and similar toilet sprays, and mounts and heads therefor; powder-puffs and pads, for the application of cosmetics or toilet preparations.	
9616.10	Scent sprays and similar toilet sprays, and mounts and heads therefor	CTH
9616.20	Powder-puffs and pads for the application of cosmetics or toilet preparations	CTH
9617.00	Vacuum flasks and other vacuum vessels, complete with cases; parts thereof other than glass inners.	CTH
9618.00	Tailors' dummies and other lay figures; automata and other animated displays used for shop window dressing.	CTH
9619.00	Sanitary towels (pads) and tampons, napkins and napkin liners for babies and similar articles, of any material.	CC
SECTION XXI WORKS OF ART, COLLECTORS' PIECES AND ANTIQUES (Chapter 97)		
97	CHAPTER 97 WORKS OF ART, COLLECTORS' PIECES AND ANTIQUES	
9701	Paintings, drawings and pastels, executed entirely by hand, other than drawings of heading 49.06 and other than hand-painted or hand-decorated manufactured articles; collages and similar decorative plaques.	
9701.10	Paintings, drawings and pastels	CTH
9701.90	Other	CTH
9702.00	Original engravings, prints and lithographs.	CTH
9703.00	Original sculptures and statuary, in any material.	CTH
9704.00	Postage or revenue stamps, stamp-postmarks, first-day covers, postal stationery (stamped paper), and the like, used or unused, other than those of heading 49.07.	CTH

Tariff Reference (HS2012)	Product Description	Applicable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9705.00	Collections and collectors' pieces of zoological, botanical, mineralogical, anatomical, historical, archaeological, palaeontological, ethnographic or numismatic interest.	**CTH**
9706.00	Antiques of an age exceeding one hundred years.	**CTH**

CHAPTER 4
CUSTOMS ADMINISTRATION AND TRADE FACILITATION

ARTICLE 4.1: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Chapter are to:

(a) simplify customs procedures of the Parties;

(b) ensure predictability, consistency and transparency in the application of customs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of the Parties;

(c) ensure the efficient and expeditious clearance of goods;

(d) facilitate trade between the Parties; and

(e)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customs administrations, within the scope of this Chapter.

ARTICLE 4.2: TRANSPARENCY

1.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customs procedures and practices are predictable, consistent and transparent.

2. Further to Article 19.1 (Publication), each Party shall publish on the Internet all customs laws and regulations and any administrative procedures relevant to importation or exportation which it applies or enforces.

3. Each Party shall establish or maintain one or more enquiry points for responding to enquiries from interested persons regarding customs matters covered by this Agreement, and provide details of such enquiry points to the other Party. Information concerning the procedures for making such enquiries shall be easily accessible to the public.

ARTICLE 4.3: HARMONISATION OF DOCUMENTS AND DATA ELEMENTS

1.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pursue the harmonisation of documentation used in trade and data element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2.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use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a set of common data elements and processes in accordance with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WCO") Customs Data Model and related WCO recommendations and guidelines.

3. Each Party shall work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initiatives that harmonise the data requirements of its respective agencies associated with the importation, exportation or transit of goods, and minimise the submission of trade data, with the objective of allowing importers and exporters to present all required data to one agency.

ARTICLE 4.4: USE OF AUTOMATED SYSTEMS IN THE PAPERLESS TRADING ENVIRONMENT

1. Each customs administration shall apply information technology to support customs operations where it is cost-effective and efficient, particularly in the paperless trading context, taking into account developments in this area within the WCO.

2. Each customs administration shall endeavour to use information technology that expedites procedures for the release of goods, including the submission and processing of information and data before the arrival of the shipment of those goods, as well as electronic or automated systems for risk management and targeting.

ARTICLE 4.5: RISK MANAGEMENT

In administering customs procedures, each customs administration shall focus resources on shipments of high-risk goods and facilitate the clearance, including release, of low-risk goods.

ARTICLE 4.6: RELEASE OF GOODS

1.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simplified customs procedures for the efficient release of goods in order to facilitate trade between the Parties.

2.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customs administration and other competent authorities adopt or maintain procedures that:

(a) provide for the release of goods within a period no greater than that required to ensure compli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b) provide for advance electronic submission and processing of information before the physical arrival of goods to enable the release of those goods on arrival;

(c) to the extent possible, allow goods to be released at the point of arrival, without temporary transfer to warehouses or other facilities; and

(d) under circumstances specified in the importing Party's laws, regulations or administrative procedures, provide that no customs duties or taxes will be assessed on, nor will formal entry documents be required for, shipments of eligible goods valued at or less than a specified amount.

3.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adopt or maintain a system under which goods in need of urgent clearance can obtain customs clearance 24 hours a day including holidays.

ARTICLE 4.7: ADVANCE RULINGS

1. Each Party shall issue, through its customs administration, prior to the importation of a good into its territory, a written advance ruling at the written request of an importer in its territory, or an exporter or producer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5] with regard to:

(a) tariff classification;

(b) the application of customs valuation criteria for a particular cas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c) whether a good is originating in accordance with Chapter 3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and

(d) such other matters as the Parties may agree.

2.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procedures for issuing written advance rulings which:

(a) include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formation required to process a request for an advance ruling;

(b) allow its customs administration, at any time during the course of an evaluation of an application for an advance ruling, to request that the applicant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which may include a sample of the goods, necessary to evaluate the request;

(c) ensure that an advance ruling be based on the facts and circumstances presented by the applicant and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the decision-maker;

(d) provide that an advance ruling be issued to the applicant expeditiously, and within a period specified in its laws, regulations or administrative procedures, after the receipt of all necessary information; and

(e) provide that its customs administration provide a written explanation of the reasons for the advance ruling.

3. A Party may decline to issue an advance ruling if the facts and circumstances forming the basis of the advance ruling are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or judicial review. A Party that, in accordance with this paragraph, declines to issue an advance ruling, shall promptly notify the requestor in writing, setting forth the relevant facts and the basis for its decision to decline to issue the advance ruling.

4.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dvance rulings shall be in force from the date they are issued, or another date specified in the ruling, provided that the facts or circumstances on which the ruling is based remain unchanged. Subject to paragraphs 1 and 5, an advance ruling shall remain in force for no less than five years, or such other period as specified in the laws, regulations or administrative rulings of the issuing Party.

5. The issuing Party may modify or revoke an advance ruling after the Party notifies the requestor, and where,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a) there is a change in its laws and regulations;

(b) incorrect information was provided or relevant information was withheld;

(c) there is a change in a material fact; or

(d) there is a change in the circumstances on which the ruling was based.

6. The issuing Party may modify or revoke an advance ruling retroactively if the requestor,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provided incorrect information or withheld relevant information.

[5] For greater certainty, an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may submit a request for an advance ruling through an authorised representative.

7.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publish its advance rulings, subject to its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ARTICLE 4.8: APPEAL PROCEDURES

1.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with respect to its determinations on customs matters, importers in its territory have access to:

(a) at least one level of administrative review independent of the official or authority responsible for the determination under review; and

(b) judicial review of the determination or decision taken at the final level of administrative review.

2. Each Party shall grant substantially the same rights of review and appeal of determinations of origin and advance rulings by its customs administration as it provides to importers in its territory to any person who has:

(a) completed and signed, or applied for, a Certificate of Origin for a good that has been the subject of a determination of origin; or

(b) received an advance ruling in accordance with Article 4.7.

3. Each Party shall allow an exporter or producer to provid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Party conducting the review and to request that Party to treat that information as confidential in accordance with the laws, regulations and rules of that Party.

ARTICLE 4.9: CUSTOMS COOPERATION

1. The Parties shall, through their respective customs administrations, enhance their cooperation in customs matters.

2. The Parties affirm their commitment to the facilitation of the legitimate movement of goods and shall exchange expertise on measures to improve customs techniques and procedures, including on risk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3. The Parties shall cooperate in relation to:

(a)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governing importations or exportations, including claim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procedures for making claim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and verification procedures;

(b) tariff classification, and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c) restrictions or prohibitions on imports or exports; and

(d) other customs matters as the Parties may agree.

4.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provide the other Party with advance notice of any proposed laws, regulations or policies governing the administration of customs procedures that are likely to substantially affect the operation of this Agreement.

5. To the extent permitted by each Party's laws, regulations and rules, the customs administrations of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provide each other with information to assist in the investigation and prevention of infringements of customs laws and regulations.

6. The Parties shall exchange the details of contact points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under this Chapter.

ARTICLE 4.10: BILATERAL CUSTOMS CONSULTATION

1. Each customs administration may consult with the other customs administration on any matter arising from the oper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and on other trade facilitation issues, including tariff classification, customs valuation and origin determination. A Party should promptly respond to any request for consultation on such matters from the other Party.

2. In the event that consultations reques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fail to resolve any such matter, the requesting Party may refer the matter to the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and Trade Facilitation for consideration.

ARTICLE 4.11: CONFIDENTIALITY

1. Further to Articles 22.4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22.5 (Confidentiality), neither Party shall use or disclos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other Party under this Chapter or Chapter 3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except for the purposes for which it was provided, or otherwise as required or authorised by a Party's laws and regulations. The customs administration which supplied that information shall be notified of such other use without delay.

2.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ny information received in accordance with this Chapter or Chapter 3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shall be subject to the same protection as the same kind of information is subject to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arty receiving the information.

3. Nothing in this Chapter or Chapter 3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shall be construed to require a Party to furnish or allow access to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a) be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as determined by its laws, regulations and rules;

(b) be contrary to any of its laws, regulations and rul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ose protecting personal privacy or the financial affairs and accounts of individuals; or

(c) impede law enforcement.

ARTICLE 4.12: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AND TRADE FACILITATION

1. The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and Trade Facilitatio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4 (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shall comprise officials of each Party responsible for rules of origin and customs matters.

2. The Committee shall consider and, as appropriate, resolve any matter arising under this Chapter or Chapter 3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by means of, inter alia, considering common approaches to the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ose Chapters.

3. The Committee shall meet on request of either Party or the Joint Committee.

ARTICLE 4.13: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customs procedures means the treatment applied by each customs administration to goods that are subject to customs control; and

goods means all goods falling within Chapters 1 to 97 of the Harmonized System, irrespective of the scope of this Agreement.

CHAPTER 5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ection A: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RTICLE 5.1: SCOPE

1.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paragraphs 3 and 4, this Section shall apply to all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of the central level of government that may,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trade in goods between the Parties.

2. Each Party shall take such reasonable measures as may be available to it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by regional or local government and non-governmental bodies within its territory which are responsible for the preparation, adoption and application of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3. Technical specifications prepared by governmental bodies for production or consumption requirements of such bodies shall not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but shall be addressed in Chapter 12 (Government Procurement), in accordance with its coverage.

4. This Section shall not apply to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which are covered in Section B of this Chapter.

ARTICLE 5.2: AFFIRMATION OF THE TBT AGREEMENT

Further to Article 1.2 (Relation to Other Agreements), each Party affirms its existing rights and obligations with respect to each other in the TBT Agreement.

ARTICLE 5.3: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S AND RECOMMENDATIONS

1. Each Party shall,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4 and 5.4 of the TBT Agreement, use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s and recommendations or the relevant parts thereof as a basis for it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2. Where a Party does not use an international standard, guide or recommendation or the relevant parts thereof as a basis for a technical regulation or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it shall, on request of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5 and 5.4 of the TBT Agreement, explain the reasons for its decision.

3. The Parties shall encourage their respective standards bodies to consult and exchange views on matters under discussion in relevant international or regional bodies that develop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s, or recommendations relevant to this Section.

4. In determining whether an international standard, guide, or recommendatio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s 2 and 5 and Annex 3 of the TBT Agreement exists, each Party shall apply the *Decision of the Committee on Principles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s and Recommendations With Relation to Articles 2, 5 and Annex 3 of the Agreement*, adopted on 13 November 2000 by the WTO 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nex 4 of G/TBT/9).

ARTICLE 5.4: TECHNICAL REGULATIONS

1. Each Party shall give positive consideration to accepting technical regulations of the other Party as equivalent to its own, even if these regulations differ from its own, provided that it is satisfied that these regulations adequately fulfil the objectives of its own regulations.

2. Where a Party does not accept a technical regulation of the other Party as equivalent to its own, it shall, on request of the other Party, explain the reasons for its decision.

ARTICLE 5.5: MARKING AND LABELLING

1.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n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nnex 1 of the TBT Agreement, a technical regulation may include or deal exclusively with marking or labelling requirements.

2. Each Party shall,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 of the TBT Agreement, ensure that technical regulations, including mandatory marking or labelling of products, are not prepared, adopted or applied with a view to, or with the effect of, creating unnecessary obstacles to international trade. For this purpose, such technical regulations shall not be more trade restrictive than necessary to fulfil a legitimate objective.

3. Where a Party requires mandatory marking or labelling of products:

(a) the Party shall endeavour to minimise the requirements for marking or labelling other than marking or labelling relevant to consumers or users of the product. Where marking or labelling for other purposes is required, including for fiscal purposes, such requirements shall be form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TBT Agreement, in a manner that is not more trade restrictive than necessary to fulfil a legitimate objective;

(b) the Party shall, where it requires the use of a unique identification number by economic operators, issue such number to the economic operators of the other Party without undue delay and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c) the Party shall remain free to require that information on the marks or labels be in a specified language. Where an international system of nomenclature has been accepted by the Parties, such nomenclature may be used. The simultaneous use of additional languages shall not be prohibited, provided that:

(i)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additional languages is identical to that provided in the specified language; or

(ii)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additional languages does not constitute a deceptive statement regarding the product; and

(d) the Party shall, where it considers that legitimate objectives in accordance with the TBT Agreement are not compromised thereby, endeavour to accept:

(i) non-permanent or detachable labels; or

(ii) marking or labelling in the accompanying documentation in place of marking or labelling attached to the product.

ARTICLE 5.6: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a broad range of mechanisms exists to facilitate the acceptance in a Party's territory of the results of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conducted in the other Party's territory. For example:

(a) a Party may agree with the other Party to accept the results of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that bodies located in the other Party's territory conduct with respect to specific technical regulations;

(b) a Party may adopt accreditation procedures for qualifying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located in the other Party's territory;

(c) a Party may designate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located in the other Party's territory;

(d) a Party may recognise the results of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conducted in the other Party's territory;

(e)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located in each of the Parties' territories may enter into voluntary arrangements to accept the results of each other's assessment procedures; and

(f) the importing Party may rely on a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2. The Parties shall exchange information on the range of mechanisms relevant to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with a view to facilitating the acceptance of conformity assessment results.

3. Where a Party does not accept the results of a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conduct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it shall, on request of the other Party, explain the reasons for its decision.

4. A Party shall give positive consideration to a request from the other Party to negotiate agreements for the recognition of the results of the other Party's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Where a Party declines a request from the other Party to engage in negotiations or conclude an agreement on facilitating recognition in its territory of the results of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conducted by bodies in the other Party's territory, it shall, on request of the other Party, explain the reasons for its decision.

ARTICLE 5.7: JOINT COOPERATION

1. The Parties shall strengthen their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with a view to increasing the mutual understanding of their respective systems, and facilitating access to their respective markets. In particular, the Parties shall seek to identify, develop and promote trade facilitating bilateral initiatives regarding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that are appropriate for particular issues or sectors. These initiatives may include cooperation on regulatory issues, such as:

(a) equivalence of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s;

(b) good regulatory practice;

(c) transparency;

(d) alignm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e) reliance on a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f) use of accreditation to qualify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and

(g) mechanisms for the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2. On request of the other Party, a Party shall give positive consideration to a sector-specific proposal that the requesting Party makes for further cooperation under this Section.

ARTICLE 5.8: TRANSPARENCY

1. Each Party shall allow persons of the other Party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on terms no less favourable than those accorded to its own persons.

2. Each Party shall recommend that non-governmental bodies in its territory observe paragraph 1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standards and voluntary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3. With a view to enhancing the opportunity for persons and the other Party to be aware of, and to understand proposed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and to be able to provide meaningful comments on such regulations and procedures, a Party publishing a notice or making a no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9, 3.2, 5.6 or 7.2 of the TBT Agreement shall:

(a) include an explanation of the objectives the proposed technical regulation or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are meant to serve and how it addresses those objectives; and

(b) transmit the proposal electronically to the other Party through, in the case of a Korean proposal, the Australian enquiry point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of the TBT Agreement or, in the case of an Australian proposal, the Korean Coordinator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9 at the same time as it notifies WTO Members of the proposal in accordance with the TBT Agreement.

Each Party should allow at least 60 days after it transmits a proposal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b) for the public and the other Party to make comments in writing on the proposal.

4. Each Party shall publish, or otherwise make available to the public, in print or electronically, its responses to significant comments it receives from the public or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no later than the date it publishes the final technical regulation or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5. Where a Party makes a no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0 or 5.7 of the TBT Agreement, it shall, at the same time, transmit the notification electronically to the other Party through, in the case of a Korean proposal, the Australian enquiry point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of the TBT Agreement or, in the case of an Australian proposal, the Korean Coordinator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9.

6. On request of the other Party, a Party shall provide the other Party with information regarding the objective of, and rationale for, a standard, technical regulation or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that the Party has adopted or is proposing to adopt.

ARTICLE 5.9: COORDINATION MECHANISM

1. Each Party shall nominate a TBT Coordinator and give appropriate information to the other Party when its TBT Coordinator changes. The TBT Coordinators shall work jointly in order to facilitate implementation of this Sec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in all matters pertaining to this Section.

2. The TBT Coordinators' functions shall include:

(a)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is Section;

(b) promptly addressing any issue that a Party rais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adoption, application, or enforcement of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or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c) enhancing cooperation in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d) facilitating the consideration of any sector-specific proposal a Party makes for further cooperation between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including, where appropriate, between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in the Parties' territories;

(e) facilitating the consideration of a request of the other Party that a Party recognise the results of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conducted by bodies in the other Party's territory, including a request for the negotiation of an agreement, in a sector nominated by that other Party;

(f) exchanging information on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in response to requests for information from a Party;

(g) as appropriate, exchanging information on developments in non-governmental, regional and multilateral for a engaged in activities related to standardisation,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h) facilitating cooperation in the area of specific technical regulations by referring enquiries from a Party to the appropriate regulatory authorities;

(i) on request of a Party, consulting on any matter arising under this Section; and

(j) reviewing this Section in light of any developments under the TBT Agreement, and developing recommendations for amendments to this Section in light of those developments.

3. The TBT Coordinators shall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by any agreed method that is appropriate for the efficient and effective discharge of their functions.

4. The Parties may, as they consider appropriate, establish an *ad hoc* Working Group, comprising representatives of each Party. The scope and mandate of any *ad hoc* Working Group shall be determined by the Parties. Subject to decisions of the Parties, each *ad hoc* Working Group may:

(a) include government representatives with responsibility for the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or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b) include or consult with non-governmental experts and stakeholders; and

(c) determine its work program, taking into account relevant international activities.

5. Where a Party declines a request from the other Party to establish an *ad hoc* Working Group, it shall, on request of the other Party, explain the reasons for its decision.

6.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TBT Coordinator shall be:

(a) for Korea, the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or its successor; and

(b) for Australia, the Department of Industry, or its successor.

ARTICLE 5.10: INFORMATION EXCHANGE

Any information or explanation that a Party provides on request of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shall be provided in print or electronically within a reasonable period, and where possible within 60 days.

ARTICLE 5.11: DISPUTE SETTLEMENT

Neither Party shall have recourse to dispute settlement under this Agreement for any matter arising under this Section.

ARTICLE 5.12: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standard**, **technical regulation**,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and **non-governmental body**[6] shall have the meanings assigned to those terms in Annex 1 of the TBT Agreement.

Section B: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RTICLE 5.13: SCOPE

This Section shall apply to all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of a Party that may,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trade between the Parties.

ARTICLE 5.14: AFFIRMATION OF THE SPS AGREEMENT

Further to Article 1.2 (Relation to Other Agreements), each Party affirms its existing rights and obligations with respect to each other in the SPS Agreement.

[6] For greater certainty, "local government body" in the definition of "non-governmental body" taken from the TBT Agreement includes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as defined in Article 1.4.

ARTICLE 5.15: CONTACT POINTS

1. Each Party shall designate a contact point relating to the operation of this Sec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contact point shall be:

(a) for Korea,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its successor; and

(b) for Australia,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or its successor.

2. The contact points shall:

(a) facilitat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relating to this Section;

(b) coordinate the technical meeting referred to in Article 5.16; and

(c) facilitate any other communications between the Parties on any matter covered by this Section.

ARTICLE 5.16: TECHNICAL MEETINGS

1. The Parties shall hold technical meetings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atters at such venues and on such dates as may be agreed by the Parties. Representatives of each Party's competent authorities who have responsibility for sanitary and phytosanitary matters shall participate in the meetings.

2. The technical meetings shall be coordinated by the contact points referred to in Article 5.15.

3. The functions of the technical meetings shall be to:

(a) review and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Section;

(b)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of each Party'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nd the regulatory processes that relate to those measures;

(c) engage in cooperative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5.17.2;

(d) as appropriate, seek to addres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atters of mutual interest to the Parties; and

(e) as appropriate, report the outcomes of discussions of the technical meeting to the Joint Committee.

ARTICLE 5.17: COOPERATION

1. The Parties shall enhance implementation of the SPS Agreement, including through:

(a) cooperating, including exchanging views, in relevant international bodies engaged in food safety and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issues;

(b) facilitating the timely exchange of information on their respective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nd

(c) sharing knowledge and experience.

2. The Parties shall explore opportunities for further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atters of mutual interest at the bilateral, regional and multilateral levels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3. Where a Party makes a no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b) or 6(a) of Annex B of the SPS Agreement, it shall provide a copy of the notification to the contact point of the other Party at the same time as the notification is provided to the WTO.

ARTICLE 5.18: DISPUTE SETTLEMENT

Neither Party shall have recourse to dispute settlement under this Agreement for any matter arising in this Section.

CHAPTER 6
TRADE REMEDIES

Section A: Safeguard Measures

ARTICLE 6.1: APPLICATION OF A SAFEGUARD MEASURE

If, as a result of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a customs duty under this Agreement,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is being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 Party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in absolute terms or relative to domestic production, and under such conditions as to be a substantial caus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to a domestic industry producing a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good, the Party may:

(a) suspend the further reduction of any rate of customs duty on the good provided for under this Agreement;

(b) increase the rate of customs duty on the good to a level not to exceed the lesser of:

(i) the most-favoured-n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MFN") applied rate of duty on the good in effect at the time the safeguard measure is applied; and

(ii) the MFN applied rate of duty on the good in effect on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or

(c) in the case of a customs duty applied to a good on a seasonal basis, increase the rate of duty to a level that, for each season, does not exceed the lesser of:

(i) the MFN applied rate of duty on the good in effect for the corresponding season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application of the safeguard measure; and

(ii) the MFN applied rate of duty on the good in effect for the corresponding season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6.2: CONDITIONS AND LIMITATIONS

1. A Party shall apply a safeguard measure only following an investigation by the Party's competent authori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and requirements provided for in Articles 3 and 4.2[7] of the Safeguards Agreement, and to this end, Articles 3 and 4.2 of the Safeguards Agreement are incorporated into and made part of this Agreement, *mutatis mutandis*.

2. A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upon initiation of an investigation described in paragraph 1 and shall consult with the other Party as far in advance of applying a safeguard measure as practicable, with a view to reviewing the information arising from the investigation and exchanging views on the safeguard measure.

3.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complete any such investigation within one year of the date of its initiation.

[7] For the purpose of incorporating Article 4.2 of the Safeguards Agreement, the causal link referred to in Article 4.2(b) of the Safeguards Agreement means "substantial cause" as defined in Article 6.6.

4. Neither Party shall apply or maintain a safeguard measure:

(a) except to the extent, and for such time, as may be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serious injury and to facilitate adjustment;

(b) for a period exceeding two years, except that the period may be extended by up to one year i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applying Party determine, in conformity with the procedures specified in this Article, that the safeguard measure continues to be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serious injury and to facilitate adjustment and that there is evidence that the industry is adjusting, provided that the total period of application of a safeguard measure, including the period of initial application and any extension thereof, shall not exceed three years; or

(c) beyond the expiration of the transition period, except with the consent of the other Party.

5. Neither Party shall apply a safeguard measure more than once against the same good.

6. No safeguard measure or provisional safeguard measure shall be applied against a particular good while a global safeguard measure under Article XIX of GATT 1994 and the Safeguards Agreement in respect of that good is in place. In the event that a global safeguard measure is taken in respect of a particular good, any existing safeguard measure or provisional safeguard measure which is taken against that good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shall be terminated.

7. Where the expected duration of a safeguard measure is over one year, the applying Party shall progressively liberalise it at regular intervals.

8. When a Party terminates a safeguard measure, the rate of customs duty shall be the rate that, in accordance with the Party's Schedule to Annex 2-A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would have been in effect but for the safeguard measure.

ARTICLE 6.3: PROVISIONAL SAFEGUARD MEASURE

1. In critical circumstances where delay would cause damage that would be difficult to repair, a Party may apply a provisional safeguard measure in accordance with a preliminary determination by its competent authorities that there is clear evidence that imports of an originating good from the other Party have increased as the result of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a customs duty under this Agreement, and have become a substantial caus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to its domestic industry.

2. Before applying a provisional safeguard measure the applying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and shall immediately initiate consultations after applying the provisional safeguard measure.

3. The duration of any provisional safeguard measure shall not exceed 200 days, during which time the applying Party shall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6.2.1.

4. The applying Party shall promptly refund any additional customs duties collected as a result of a provisional safeguard measure if the investigatio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2.1 does not result in a finding tha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6.1 have been met. The duration of any provisional measure shall be counted as part of the period described in Article 6.2.4(b).

ARTICLE 6.4: COMPENSATION

1. No later than 30 days after it applies a safeguard measure, a Party shall afford an opportunity for the other Party to consult with it regarding appropriate trade liberalising compensation in the form of concessions having substantially equivalent trade effects or equivalent to the value of the additional duties expected to result from the safeguard measure. The applying Party shall provide such compensation as the Parties mutually agree.

2. If the Parties are unable to agree on compensation within 30 days after consultations begi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the Party against whose originating good the safeguard measure is applied may suspend the application of concessions with respect to originating goods of the applying Party that have trade effects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safeguard measure.

3. The applying Party's obligation to provide compensation under paragraph 1 and the other Party's right to suspend concession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shall terminate on the date the safeguard measure terminates.

ARTICLE 6.5: GLOBAL SAFEGUARD MEASURES

Each Party retains its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Article XIX of GATT 1994 and the Safeguards Agreement and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This Agreement shall not confer any additional rights or impose any additional obligations o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measures applied under Article XIX of GATT 1994 and the Safeguards Agreement or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except that a Party applying such a measure under Article XIX of GATT 1994 and the Safeguards Agreement may exclude imports of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from the measure.

ARTICLE 6.6: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Section A:

Agreement on Agriculture means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in Annex 1A of the WTO Agreement;

domestic industry means, with respect to an imported good, the producers as a whole of the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good operating in the territory of a Party, or those whose collective output of the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good constitutes a major proportion of the total domestic production of that good;

safeguard measure means a measure described in Article 6.1;

serious injury means a significant overall impairment in the position of a domestic industry;

substantial cause means the dominant cause that contributes more than any other individual cause;

threat of serious injury means serious injury that, on the basis of facts and not merely on allegation, conjecture, or remote possibility, is clearly imminent; and

transition period in relation to a particular good means the period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until five years after the date of the elimination or the

completion of the reduction period of the customs duties in accordance with that Party's schedule of tariff commitments in Annex 2-A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Section B: 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s

ARTICLE 6.7: 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S

1. Notwithstanding Article 2.3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a Party may apply an 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 on an originating agricultural good listed in that Party's Schedule to Annex 6-A, if the aggregate volume of imports of that good in any calendar year exceeds a trigger level set out in that Party's Schedule to Annex 6-A.

2. The duty to be applied as the 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 under paragraph 1 shall not exceed the lesser of:

(a) the prevailing MFN applied rate;

(b) the MFN applied rate of duty in effect on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or

(c) the duty rate set out in the applying Party's Schedule to Annex 6-A.

3. Neither Party shall maintain an 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 under this Article beyond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in which it has applied the measure.

4. Neither Party shall apply or maintain an 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 on an originating agricultural good if the period specified in the agricultural safeguard provisions of the Party's Schedule to Annex 6-A has expired.

5. Neither Party shall apply or maintain an 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 under this Article and at the same time apply or maintain, on the same good:

(a) a safeguard measure under this Agreement;

(b) a measure under Article XIX of GATT 1994 and the Safeguards Agreement; or

(c) a safeguard measure applied under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6. A Party shall implement 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s in a transparent manner. Within 60 days after applying a measure, the Party applying an 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and provide it with relevant data concerning the measure including trade volumes. On request, the Party applying the 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 shall consult with the other Party with respect to the conditions of the application of such 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

7. A good which is *en route* on the basis of a contract settled before the 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 is applied shall be exempt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safeguard measure provided that it may be counted in the volume of imports of the good in question during the following calendar year for the purposes of trigger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in that calendar year.

8.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is Article may be the subject of discussion and review in the Committee on Trade in Goods.

Section C: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RTICLE 6.8: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1. Each Party retains its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WTO Agreement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Chapter,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confer any additional rights or impose any additional obligations on a Party with respect to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measures.

2. In order to enhance transparency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WTO Agreement:

(a) the Parties confirm their current practice of counting toward the average all individual margins, whether positive or negative, when anti-dumping margins are established on the weighted-to-weighted basis or transaction-to-transaction basis, or weighted-to-transaction basis, and share their expectation that such practice will continue[8]; and

(b) the Party making such a decision to impose an anti-dumping du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9.1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shall normally apply the 'lesser duty' rule, by imposing a duty which is less than the dumping margin where such lesser duty would be adequate to remove the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ARTICLE 6.9: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S

1. After receipt by a Party's competent authorities of a properly documented anti-dumping application relating to imports from the other Party and before proceeding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the Party shall give written notice, at the earliest possible opportunity, to the other Party and, immediately after initiating an investigation, shall afford the other Party an adequate opportunity to make inquiries and representations regarding the application.

2. As soon as possible after an application for countervailing measures is accept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a Party and before the initiation of an investigation, if products of the other Party may be subject to such investigation, the other Party shall be invited for consultations with the aim of clarifying the situation and arriving at a mutually agreed solution.

ARTICLE 6.10: UNDERTAKINGS

1. After a Party's competent authorities initiate an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that Party shall give written notice, which shall include information about the availability of undertakings, to the other Party.

2. In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where a Party's competent authorities have made a 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dumping and injury caused by such dumping, that Party shall, to the extent possible, inform exporters of the other Party about the availability of undertakings and extend reasonable consideration to undertakings requested by the exporters of the other Party.

3. In a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where a Party's competent authorities have made a 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subsidisation and injury caused by such subsidisation,

[8] This is without prejudice to the position each Party takes in the WTO's Doha Development Agenda negotiations on Rules.

that Party shall inform the other Party and to the extent possible exporters of the other Party, about the availability of undertakings and extend reasonable consideration to undertakings requested by the other Party or the exporters of the other Party.

ANNEX 6-A
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S

Schedule of Korea

1. This Annex sets out those originating goods that may be subject to 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s under Article 6.7, the trigger levels for applying such measures, and the maximum duty that may be applied each year for each such good:

(a) for beef as covered below;

Coverage: HSK provisions 0201.10.0000, 0201.20.1000, 0201.20.9000, 0201.30.0000, 0202.10.0000, 0202.20.1000, 0202.20.9000 and 0202.30.0000

Year	1	2	3	4	5	6
Trigger Level (MT)	154,584	157,676	160,829	164,046	167,327	170,673
Safeguard Duty (%)	40	40	40	40	40	30

Year	7	8	9	10	11	12
Trigger Level (MT)	174,087	177,569	181,120	184,742	188,437	192,206
Safeguard Duty (%)	30	30	30	30	24	24

Year	13	14	15	16
Trigger Level (MT)	196,050	199,971	203,970	NA
Safeguard Duty (%)	24	24	24	0

(b) for malt (not roasted) and malting barley as covered below;

Coverage: HSK provisions 1003.00.1000 and 1107.10.0000

Year	1	2	3	4	5	6
Trigger Level (MT)	147,486	150,436	153,444	156,513	159,644	162,836
Safeguard Duty (%)						
1003.00.1000(513%)	502	479	455	432	408	385
1107.10.0000(269%)	263	258	252	246	240	216

Year	7	8	9	10	11	12
Trigger Level (MT)	166,093	169,415	172,803	176,259	179,785	183,380
Safeguard Duty (%)						
1003.00.1000(513%)	361	338	315	291	268	244
1107.10.0000(269%)	207	199	190	181	139	127

Year	13	14	15	16
Trigger Level (MT)	187,048	190,789	194,605	NA
Safeguard Duty (%)				
1003.00.1000(513%)	221	197	174	0
1107.10.0000(269%)	115	103	91.5	0

(c) for maize (other) as covered below;

Coverage: HSK provision 1005.90.9000

Year	1	2	3	4	5	6
Trigger Level (MT)	33,053	33,714	34,388	35,076	35,777	36,493
Safeguard Duty (%)	313	298	283	268	253	190

Year	7	8
Trigger Level (MT)	37,223	NA
Safeguard Duty (%)	167	0

(d) for sugar as covered below;

Coverage: HSK provision 1701.99.0000

Year	1	2	3	4	5	6
Trigger Level (MT)	946	965	984	1,004	1,024	1,044
Safeguard Duty (%)	35	35	35	35	35	35

Year	7	8	9	10	11	12
Trigger Level (MT)	1,065	1,087	1,108	1,131	1,153	1,176
Safeguard Duty (%)	35	35	35	35	35	35

Year	13	14	15	16	17	18	19
Trigger Level (MT)	1,200	1,224	1,248	1,273	1,299	1,325	NA
Safeguard Duty (%)	35	35	35	35	35	35	0

2. For greater certainty, no 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 may be applied or maintained after the date the safeguard duties set out above are zero.

CHAPTER 7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RTICLE 7.1: SCOPE

1. This Chapter shall apply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affecting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by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Such measures include measures affecting:

(a) the production, distribution, marketing, sale or delivery of a service;

(b) the purchase or use of, or payment for, a service;

(c) the access to and use of distribution, transport, or tele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in connection with the supply of a service;

(d) the presence in its territory of a service supplier of the other Party; and

(e) the provision of a bond or other form of financial security as a condition for the supply of a service.

2. Articles 7.4, 7.7, and 7.8 shall also apply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affecting the supply of a service in its territory by a covered investment[9].

3. This Chapter shall not apply to:

(a) financial services as defined in Article 8.20 (Definitions), except that paragraph 2 shall apply where the financial service is supplied by a covered investment that is not a covered investment in a financial institution as defined in Article 8.20 (Definitions) in a Party's territory;

(b) government procurement;

(c) subsidies or grants provided by a Party, including government-supported loans, guarantees, and insurance; or

(d) air services, includ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services, whether scheduled or non-scheduled, and related services in support of air services, other than:

(i) aircraft repair and maintenance services;

(ii) the selling and marketing of air transport services;

(iii) computer reservation system services; and

(iv) specialty air services.

The Parties note the multilateral negotiations pursuant to the review of the GATS Annex on Air Transport Services. Upon the conclusion of such multilateral negotiations, the

[9] For greater certainty,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s 7.4, 7.7, and 7.8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affecting the supply of a service in its territory by a covered investment is limited to the scope specified in this Article, subject to any applicable non-conforming measures and exceptions.

Parties shall conduct a review for the purpose of discussing appropriate amendments to this Agreement so as to incorporate the results of such multilateral negotiations.

4. This Chapter shall not impose any obligation on a Party with respect to a national of the other Party seeking access to its employment market, or employed on a permanent basis in its territory, and shall not confer any right on that national with respect to that access or employment.

5. This Chapter shall not apply to services supplied in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in a Party's territory. A service supplied in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means any service which is supplied neither on a commercial basis, nor in competition with one or more service suppliers.

ARTICLE 7.2: NATIONAL TREATMENT

1. Each Party shall accord to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ts own service suppliers.

2. The treatment to be accorded by a Party under paragraph 1 means, with respect to a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e most favourable treatment accorded, in like circumstances, by that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to service suppliers of the Party of which it forms a part.

ARTICLE 7.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Each Party shall accord to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service suppliers of a non-Party.

ARTICLE 7.4: MARKET ACCESS

Neither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either on the basis of a regional subdivision or on the basis of its entire territory, measures that:

(a) impose limitations on:

(i) the number of service suppliers, whether in the form of numerical quotas, monopolies, exclusive service suppliers, or the requirement of an economic needs test;

(ii) the total value of service transactions or assets in the form of numerical quotas or the requirement of an economic needs test;

(iii) the total number of service operations or the total quantity of services output expressed in terms of designated numerical units in the form of quotas or the requirement of an economic needs test[10]; or

(iv) the total number of natural persons that may be employed in a particular service sector or that a service supplier may employ and who are necessary for, and directly related to, the supply of a specific service in the form of numerical quotas or the requirement of an economic needs test; or

[10] Subparagraph (a)(iii) does not cover measures of a Party that limit inputs for the supply of services.

(b) restrict or require specific types of legal entity or joint venture through which a service supplier may supply a service.

ARTICLE 7.5: LOCAL PRESENCE

Neither Party shall require a service supplier of the other Party to establish or maintain a representative office or any form of enterprise, or to be resident, in it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the cross-border supply of a service.

ARTICLE 7.6: NON-CONFORMING MEASURES

1. Articles 7.2 through 7.5 shall not apply to:

(a) any existing non-conforming measure that is maintained by a Party at:

(i) the central level of government, as set out by that Party in its Schedule to Annex I;

(ii) a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as set out by that Party in its Schedule to Annex I; or

(iii) a local level of government;

(b) the continuation or prompt renewal of any non-conforming measur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or

(c) an amendment to any non-conforming measur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to the extent that the amendment does not decrease the conformity of the measure, as it existed immediately before the amendment, with Article 7.2, 7.3, 7.4 or 7.5.

2. Articles 7.2 through 7.5 shall not apply to any measure that a Party adopts or maintains with respect to sectors, sub-sectors, or activities as set out in its Schedule to Annex II.

ARTICLE 7.7: DOMESTIC REGULATION

1. Where a Party requires authorisation for the supply of a service, the Party's competent authorities shall,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the submission of an application considered complete under its laws and regulations, inform the applicant of the decision concerning the application. On request of the applicant, the Party's competent authorities shall provide, without undue delay, inform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pplication. This obligation shall not apply to authorisation requirements that a Party adopts or maintains with respect to sectors, sub-sectors, or activities as set out in its Schedule to Annex II.

2.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measures relating to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technical standards, and licensing requirements do not constitute unnecessary barriers to trade in services,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ensure, as appropriate for individual sectors, that such measures are:

(a) based on objective and transparent criteria, such as competence and the ability to supply the service;

(b) not more burdensome than necessary to ensure the quality of the service; and

(c) in the case of licensing procedures, not in themselves a restriction on the supply of the service.

3. If the results of the negotiations related to Article VI:4 of the GATS (or the results of any similar negotiations undertaken in other multilateral fora in which the Parties participate) enter into effect, this Article shall be amended, as appropriate, after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to bring those results into effect between the Parties under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coordinate on such negotiations, as appropriate.

4. Subject to its laws and regulations, a Party shall permit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to use the enterprise names under which they trad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and otherwise ensure that the use of the enterprise names is not unduly restricted.

ARTICLE 7.8: TRANSPARENCY IN DEVELOPING AND APPLYING REGULATIONS

Further to Chapter 19 (Transparency):

(a) each Party shall establish or maintain appropriate mechanisms for responding to enquiries from interested persons regarding its regulations relating to the subject matter of this Chapter; and

(b) if a Party does not provi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1.2, advance notice of and opportunity for comment on regulations it proposes to adopt relating to the subject matter of this Chapter, it shall, on request of the other Party, address in writing the reasons for not doing so.

ARTICLE 7.9: RECOGNITION

1. For the purposes of the fulfilment, in whole or in part, of its standards or criteria for the authorisation, licensing, or certification of service suppliers, and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5, a Party may recognise the education or experience obtained, requirements met, or licences or certifications granted in a particular country. Such recognition, which may be achieved through harmonisation or otherwise, may be based upon an agreement or arrangement with the country concerned or may be accorded autonomously.

2. Where a Party recognises, autonomously or by agreement or arrangement, the education or experience obtained, requirements met, or licences or certifications granted in the territory of a non-Party, nothing in Article 7.3 shall be construed to require the Party to accord such recognition to the education or experience obtained, requirements met, or licences or certifications grant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3. On request of the other Party, a Party shall promptly provide information, including appropriate descriptions, concerning any recognition agreement or arrangement that the Party has concluded. For recognition arrangements entered into by relevant bodies in its territory, a Party shall encourage those bodies to provide the same information.

4. A Party that is a party to an agreement or arrangement of the type referred to in paragraph 1, whether existing or future, shall afford adequate opportunity for the other Party, if that other Party is interested, to negotiate its accession to such an agreement or arrangement or to negotiate a comparable one with it. Where a Party accords recognition autonomously, it shall afford adequate opportunity for the other Party to demonstrate that education or experience obtained, requirements met, or licences or certifications granted in that other Party's territory should be recognised.

5. A Party shall not accord recognition in a manner that would constitute a means of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in the application of its standards or criteria for the authorisation, licensing, or certification of service suppliers,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in services.

6. Annex 7-A shall apply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relating to the licensing or certification of professional service suppliers as set out in that Annex.

ARTICLE 7.10: PAYMENTS AND TRANSFERS[1]

1. Each Party shall permit all payments and transfers relating to the cross-border supply of services to be made freely and without delay into and out of its territory.

2. Each Party shall permit such payments and transfers relating to the cross-border supply of services to be made in a freely usable currency at the market rate of exchange prevailing at the time of the payment or transfer.

3.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a Party may prevent or delay a payment or transfer through the equitable, non-discriminatory, and good faith application of its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a) bankruptcy, insolvency, 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creditors;

(b) issuing, trading, or dealing in securities, futures, options, or derivatives;

(c) financial reporting or record keeping of transfers when necessary to assist law enforcement or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d) criminal or penal offences; or

(e) ensuring compliance with orders or judgments in 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ARTICLE 7.11: DENIAL OF BENEFITS

1. A Party may deny the benefits of this Chapter to a service supplier of the other Party if the service supplier is an enterprise owned or controlled by persons of a non-Party, and the denying Party adopts or maintains measures with respect to the non-Party or a person of the non-Party that prohibit transactions with the enterprise or that would be violated or circumvented if the benefits of this Chapter were accorded to the enterprise.

2. A Party may deny the benefits of this Chapter to a service supplier of the other Party if the service supplier is an enterprise owned or controlled by persons of a non-Party or of the denying Party that has no substantive business operation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If, before denying the benefits of this Chapter, the denying Party knows that the enterprise has no substantive business operation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and that persons of a non-Party, or of the denying Party, own or control the enterprise, the denying Party shall, to the extent possible, notify the other Party before denying the benefits. If the denying Party provides such notice, it shall consult with the other Party on request of the other Party.

[1] For greater certainty, Annex 11-C (Transfers) shall apply to this Article.

ARTICLE 7.12: AUDIOVISUAL CO-PRODUCTION

Recognising that audiovisual, including film, animation and broadcasting program co-productions can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audiovisual industry and to the intensification of cultural and economic exchange between them, the Parties hereby agree on Annex 7-B.

ARTICLE 7.13: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aircraft repair and maintenance services means such activities when undertaken on an aircraft or a part thereof while it is withdrawn from service and does not include so-called "line maintenance";

computer reservation system services means services provided by computerised systems that contain information about air carriers' schedules, availability, fares and fare rules, through which reservations can be made or tickets may be issued;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or **cross-border supply of services** means the supply of a service:

(a) from the territory of a Party in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b) in the territory of a Party by a person of that Party to a person of the other Party; or

(c) by a national of a Par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but does not include the supply of a service in the territory of a Party by a covered investment;

enterprise means an enterprise as defined in Article 1.4 (Definitions), and a branch of an enterprise;

enterprise of a Party means an enterprise organised or constituted under the laws of a Party, and a branch locat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and carrying out business activities there;

professional services means services, the supply of which requires specialised post-secondary education, or equivalent training or experience or examination, and for which the right to practice is granted or restricted by a Party, but does not include services supplied by tradespersons or vessel and aircraft crew members;

selling and marketing of air transport services means opportunities for the air carrier concerned to sell and market freely its air transport services including all aspects of marketing such as market research, advertising and distribution but does not include the pricing of air transport services nor the applicable conditions;

service supplier of a Party means a person of that Party that seeks to supply or supplies a service[12]; and

specialty air services means any non-transportation air services, such as aerial fire-fighting, sightseeing, spraying, surveying, mapping, photography, parachute jumping, glider towing, and helicopter-lift for logging and construction, and other airborne agricultural, industrial and inspection services.

[12] For the purposes of Articles 7.2 and 7.3, "service suppliers" has the same meaning as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as used in Articles II and XVII of GATS.

ANNEX 7-A
PROFESSIONAL SERVICES

1. On request of the other Party, a Party shall provide information concerning standards and criteria for the licensing and certification of professional service suppliers, including information concerning the appropriate regulatory or other body to consult regarding these standards and criteria. These standards and criteria include requirements regarding education, examinations, experience, conduct and ethics,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re-certification, scope of practice, local knowledge, and consumer protection.

2. Each Party shall encourage the relevant bodies in its territory to develop mutually acceptable standards and criteria for licensing and certification, to provide recommendations to the Joint Committee on mutual recognition, and to develop procedures for the temporary licensing arrangements of professional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with respect to the professional services sectors or sub-sectors listed below and any other sectors or sub-sectors that may be mutually agreed by the Parties:

(a) engineering services;

(b) architectural services;

(c) veterinary services;

(d) healthcare services provided by pharmacists and radiographers; and

(e) accounting services.

3. The Parties hereby establish a Working Group on Professional Services, comprising representatives of each Party, to facilitate the activities set out in paragraphs 1 and 2. The Working Group shall meet within three year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4. The Working Group should consider, for professional services generally and, as appropriate, for individual professional services:

(a) procedures for fostering the development of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 between relevant professional bodies of the Parties;

(b) the feasibility of developing model procedures for the licensing and certification of professional service suppliers;

(c) measures maintained at the central or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that would prevent the development of 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or prevent a service supplier of a Party from receiving the benefits of such an arrangement; and

(d) other issues of mutual interest relating to the supply of professional services.

5. The Working Group shall consider, as appropriate, relevant bilateral, plur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relating to professional services.

6. The Working Group shall report to the Joint Committee on its progress, including with respect to any recommendation for initiatives to promote mutual recognition of standards and criteria and temporary licensing, and on the further direction of its work, no later than three year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7. On receipt of a recommend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s 2 and 6, the Joint Committee shall review the recommendation within a reasonable time to determine whether it i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Based on the Joint Committee's review, each Party shall encourage its respective competent authorities, where appropriate,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 within a mutually agreed time.

8. The Joint Committee shall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is Annex at least once every two years.

ANNEX 7-B
AUDIOVISUAL CO-PRODUCTION

ARTICLE 1: COMPETENT AUTHORITIES

1. Each Party shall designate a competent authority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is Annex. Either Party may change its appointed competent authority by giving notice to the other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change in competent authority shall take effect 28 days after the notice has been received.

2. The competent authorities may examine the implementation of this Annex and consult with each other to resolve any difficulties arising out of its application.

ARTICLE 2: APPROVAL OF AUDIOVISUAL CO-PRODUCTIONS

1. Provisional approval from the competent authorities should be receiv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making of an audiovisual co-production work, subject to each Party's relevant domestic regulatory or policy arrangements.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co-producer or co-producers to provide any documentation requir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to enable the competent authorities to complete their provisional approval processes.

2. In granting provisional approval to an audiovisual work as an audiovisual co-production, each competent authority may stipulate conditions of approval, framed in order to achieve the general aims and objects of this Annex.

3. Upon completion of production,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co-producers to submit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the completed audiovisual work and any documentation requir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to enable the competent authorities to complete their approval process.

4. In granting provisional or final approval to audiovisual works under this Annex,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consultation, shall apply the provisions of this Annex, and recognise the arrangements made in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nnex on Audiovisual Co-Production.

5. In the event that approval by both the competent authorities is not granted, the audiovisual work concerned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approved for the purposes of this Annex.

6. An audiovisual work will be recognised as having completed the provisional or final approval process, as applicable, once the competent authority provides written notification to the co-producer that the approval has been granted and specifies the conditions upon which the approval is granted.

7. The approval of an audiovisual work as an audiovisual co-produc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not bind the relevant authorities of either Party to permit the public exhibition of the resulting audiovisual co-production.

ARTICLE 3: CO-PRODUCER STATUS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ensure that:

(a) the Korean co-producer satisfies all the conditions relating to status which would be required to be fulfilled, if that co-producer were the only producer, in order for the production to be eligible as an Korean audiovisual work under Korean legislation;

(b) the Australian co-producer satisfies all the conditions relating to status which would be required to be fulfilled, if that co-producer were the only producer, in order for the production to be eligible as a Australian audiovisual work under Australian legislation; and

(c) none of the co-producers are linked by common management, ownership or control, save to the extent that it is inherent in the making of the audiovisual co-production itself.

ARTICLE 4: THIRD COUNTRY CO-PRODUCTIONS

1. Where either Party maintains with a third country an audiovisual co-production agreement, or arrangement of less-than-treaty status, the competent authorities may jointly approve an audiovisual work as an audiovisual co-production under this Annex that is to be made in conjunction with a co-producer from that third country.

2. Both the financial and creative contributions of a third country co-producer shall account for not less than the percentage required under each Party's relevant domestic regulatory or policy arrangements.

3. Any third country co-producer shall fulfil all conditions relating to status which would be required to be fulfilled to produce an audiovisual work under the terms of the co-production agreement, or arrangement of less-than-treaty status, in force between that co-producer's country and either Party.

ARTICLE 5: ENTITLEMENT TO BENEFITS

1. An audiovisual co-production shall be entitled to:

(a) the full enjoyment of all the benefits which are accorded to national audiovisual works of either Party; and

(b) any benefits which may be granted to national audiovisual works of either Party, subject to that Party's laws as in force from time to time.

2. Any subsidies, tax incentives, or other financial incentives which may be granted by either Party in relation to an audiovisual co-production shall accrue to the co-producer who is permitted to claim those benefits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measures of that Party.

3. Such subsidies, tax incentives or other financial benefits shall not be assigned or disposed of except to or for the benefit of an enterprise or national of that Party, or in the case of a third country co-production under Article 4 (Third Country Co-Productions) of this Annex, any individual or enterprise that falls within the relevant scope of the audiovisual agreement or arrangement of less-than-treaty status referred to in that Article.

4. An audiovisual work made in accordance with an approval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under this Annex but completed after the termination of this Annex shall be treated as an audiovisual co-production and its co-producers shall accordingly be entitled to all the benefits of this Annex.

ARTICLE 6: IMPORT OF EQUIPMENT

Each Party shall provide, in accordance with its respective laws, regulations and procedures, temporary admission of cinematographic and technical equipment for the making of audiovisual co-productions free of import duties and taxes. The equipment may be exported by the importer free of duties and taxes, in accordance with the respective Party's laws, regulations and procedures.

ARTICLE 7: IMMIGRATION FACILITATION

Each Party shall permit nationals of the other Party, and in the case of a third country co-production under Article 4 (Third Country Co-Productions) of this Annex, any individual that falls within the relevant scope of the audiovisual agreement or arrangement of less-than-treaty status referred to in that Article, to travel to, enter and remain in its territory for the purpose of making or exploiting an audiovisual co-production,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individuals comply with the laws, regulations and procedures relating to entry into and temporary stay in its territory.

ARTICLE 8: CONTRIBUTIONS

1. Each co-producer shall have a financial contribution of not less than 20 per cent of the total financial contribution for an audiovisual co-production other than animation works intended for broadcast use. With respect to broadcast animation works, this contribution shall not be less than the percentage required under each Party's relevant domestic regulatory or policy arrangements.

2. The performing, technical and craft contribution (being the "creative" contribution) of each co-producer to an audiovisual co-production shall be in reasonable proportion to each co-producer's financial contribution.

ARTICLE 9: LOCATION FILMING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have the power to approve location filming in a country other than the countries of the participating co-producers.

ARTICLE 10: PARTICIPATION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0.2 to 10.5 of this Annex, individuals participating in the making of audiovisual co-productions shall be co-producers.

2. Performers who are citizens or permanent residents of countries other than the participating co-production countries may be engaged in the audiovisual co-production:

(a) where the competent authorities are satisfied that there are exceptional circumstances;

(b) where script or financing of the audiovisual co-production dictates their participation; or

(c) in the case of approved location filming in a country other than that of the participating co-production countries, in minor roles where this is reasonably necessary.

3. Where the competent authorities have approved location filming in a country other than that of the participating co-production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citizens or permanent residents of that country may be employed as crowd artists or to perform other services necessary for the location work to be undertake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may approve the participation of restricted numbers of technical personnel who are citizens or permanent residents of countries other than the participating co-production countries where the competent authorities are satisfied that the relevant technical expertise is not available in the co-producers' countries at the time the audiovisual co-production is made.

5. Unless otherwise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screenwriters involved in the making of audiovisual co-productions shall be nationals of either Party.

ARTICLE 11: FOOTAGE

At least 90 per cent of the footage included in an audiovisual co-production shall, subject to any departure from this rule which is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be specially shot or otherwise created for that audiovisual work.

ARTICLE 12: MAKING UP TO FIRST-RELEASE PRINT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ensure that audiovisual co-productions are made and processed up to the creation of the first-release print or digital equivalent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or, where there is a third country co-producer, that co-producer's country.

ARTICLE 13: ACKNOWLEDGMENTS AND CREDITS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ensure that each audiovisual co-production includes either a separate credit title indicating that the audiovisual work is either a "Korean-Australian co-production" or an "Australian-Korean co-production", or where relevant, a credit which reflects the participation of the Parties and the country of the third country co-producer.

ARTICLE 14: TAXATION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nnex other than Article 6, for the purposes of taxation the laws in force in each Party shall apply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ny tax treaty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5: BALANCE

1. An overriding aim of the Annex, as monitor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be to ensure that an overall balance is achieved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a) the contribution to the production costs of all audiovisual co-productions;

(b) the use of studios and laboratories;

(c) the employment of all performing, craft and technical personnel, measured on a straight head count basis; and

(d) the participation in each of the major performing, craft and technical categories and in particular, that of the writer, director and lead cast, over each period of three years commencing on the date that this Annex enters into force.

2. Either competent authority may withhold approval of an audiovisual work as an audiovisual co-production on the basis that the overriding aim of overall balance referred to in paragraph 1 would be prejudiced by such approval.

ARTICLE 16: INSTITUTIONAL MECHANISM

Each Party may request the establishment of an *ad hoc* Committee to discuss any matter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Annex by delivering a written request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and the other Party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request. The *ad hoc* Committee shall comprise appropriate senior officials from appropriate ministries and agencies of each Party. The *ad hoc* Committee shall discuss the matter at a time and place agreed to by the Parties.

ARTICLE 17: DISPUTE SETTLEMENT

1. A Party may request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y regarding any matter arising under this Annex by delivering a written request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Consultations shall commence promptly after a Party delivers a request for consultations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The Parties shall make every attempt to arrive at a mutually satisfactory resolution of the matter.

2. If the consultations under paragraph 1 fail to resolve the matter within 60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a request for consultations, either Party may request good offices, conciliation, mediation or non-binding arbitration. The *ad hoc* Committee shall decide the processes for resolution of the matter.

3. Chapter 20 (Dispute Settlement) of the FTA between Korea and Australia shall not apply to any matter or dispute arising under this Annex.

ARTICLE 18: IMPLEMENTING ARRANGEMENTS

1. The Parties acknowledge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mplementing the Annex on Audiovisual Co-Production*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2. The Parties recognise that the responsibilities and arrangements established under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ll apply in order to assist the implementation of this Annex.

ARTICLE 19: REVIEW

1. The Parties recognise the evolving nature of the audiovisual sector, in particular the role of technology.

2.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review the operation of this Annex as required and make any proposals considered necessary for any modification thereof.

ARTICLE 20: SCOPE AND INTERPRETATION OF THE ANNEX

1. To the extent of any inconsistency between this Annex and any other provision in the Agreement, this Annex shall prevail to the extent of the inconsistency.

2. Nothing in this Annex shall be used to construe any other provision in the Agreement. No provision elsewhere in the Agreement shall be used to construe any provision in this Annex.

3. For greater certainty, nothing in Section B of Chapter 1 (Initial Provisions and Definitions), Articles 7.2, 7.3, 7.4 and 7.13 of Chapter 7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Chapter 10 (Movement of Natural Persons), Chapter 11 (Investment), Chapter 19 (Transparency), Chapter 20 (Dispute Settlement), Chapter 21 (Institutional Provisions), and Chapter 22 (General Provisions and Exceptions) of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his Annex.

ARTICLE 21: DURATION AND TERMINATION

1. Nothing in Article 23.4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his Annex.

2. This Annex shall remain in force initially for a period of up to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nnex by providing written notice to terminate to the other Party 180 days before the end of that period. The Annex shall then terminate at the end of the three years.

3. If neither Party terminates this Annex under paragraph 2, it shall automatically remain in force for successive periods, each of three years, unless written notice to terminate is given by either Party at least 180 days before the end of any period of three years, in which case it shall terminate at the end of that period.

4. This Annex is separable, and its termination shall not affect the continued operation of the Agreement. Termination of this Annex shall be governed only by this Article.

ARTICLE 22: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Annex:

audiovisual co-production means an audiovisual work including films, animations, broadcasting programmes and digital format productions made by one or more co-producers of one Party in cooperation with one or more co-producers of the other Party (or in the case of a third country co-production, with a third country co-producer) which is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each Party, in consultation;

audiovisual work means any aggregate of images or of images and sounds, embodied in any material in accordance with each Party's laws and regulations;

benefits means all those financial and other incentives which may be offered to audiovisual co-productions by each Party from time to time under Article 5.1 of this Annex;

competent authority means the authority or authorities designated as such by each Party;

co-producer means one or more nationals or enterprises of a Party that are involved or seeking to be involved in the making of an audiovisual co-production, or in the case of a third country co-production under Article 4 of this Annex, any individual that falls within the relevant scope of the audiovisual agreement or arrangement of less-than-treaty status referred to in that Article;

days means calendar days;

enterprise means any entity constituted or organised under applicable law, whether or not for profit, and whether privately or governmentally-owned or controlled, including any corporation, trust, partnership, sole proprietorship, joint venture, association, or similar organisation;

existing means in effect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measure includes any law, regulation, procedure, requirement, or practice;

national means:

(a) for Korea, a Korean national within the meaning of the *Nationality Act*; and

(b) for Australia, a natural person who is an Australian citizen as defined in the *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 or a permanent resident as defined in accordance with the *Migration Regulations 1994*; and

protection and reproduction material means those materials derived from the original audiovisual work material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final version of the audiovisual work, and those materials used for making copies of the audiovisual work for the purpose of distribution and exhibition of the audiovisual work.

8 April 2014

Mr Yoon Sang-jick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Seoul, Republic of Korea

Dear Minister Yoon

In connection with the signing on this date of the Kore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the "Agreement"), I have the honour to confirm the following understandings reached between the deleg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ustralia during the course of negotiations regarding Chapters 7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11 (Investment) of the Agreement:

During the negotiations, the Parties discussed certain measures related to resource recycling and to policies to encourage low-emission motor vehicle distribution. The Parties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these measures relating to:

(a) the obligation to recycle products and packaging materials;

(b) the submission of recycling performance plans and results;

(c) the payment of applicable recycling levies;

(d) the obligation to distribute a certain percentage of low-emission motor vehicles; and

(e) the submission and approval of plans to distribute low-emission motor vehicles,

are not inconsistent with Article 11.9 (Performance Requirements).

During the negotiations, the Parties discussed regulations that prohibit an enterprise from concurrently holding two or more business licences to supply different services. The Parties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for the purpose of the Agreement, such restrictions are not inconsistent with Article 7.4 (Market Access).

During the negotiations, the Parties discussed existing regulations applicable to the establishment, extension, or transfer of educational institutions within certain geographical areas under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Law No. 11998, 6 August 2013). The Parties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such restrictions are not inconsistent with Article 7.4 (Market Access).

During the negotiations, the Parties discussed a measure that allows local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o jointly operate curricula only with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organised under Korean law, or with foreig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at have obtained accreditation from a foreign government or authorised foreign accreditation bodies. The Parties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such a measure is not inconsistent with Article 7.2 (National Treatment) and Article 11.3 (National Treatment).

During the negotiations, the Parties discussed a measure that may establish requirements regarding the types and quantities of raw materials for producing liquor under the *Liquors Act* (Law No. 11873, 7 June 2013) and its subordinate regulations. The Parties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such measure is not inconsistent with Article 11.9 (Performance Requirements), provided that it is appli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WTO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During the negotiations, the Parties discussed regulations that control a rail transportation company's ability to stop supplying its service, including closure or liquidation of the company. The Parties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such restrictions are not inconsistent with Article 7.4 (Market Access).

During the negotiations, the Parties discussed regulations on zoning and land use. The Parties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measures concerning zoning and land use are not inconsistent with Article 7.4 (Market Access).

I have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is letter and your letter in reply confirming that your Government shares these understandings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Yours sincerely

Andrew Robb

8 April 2014

The Hon Andrew Robb AO, MP
Minister for Trade and Investment
Parliament House
CANBERRA ACT 2600

Dear Minister Robb

I have the honour to acknowledge receipt of your letter of this date, which reads as follows:

In connection with the signing on this date of the Kore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the "Agreement"), I have the honour to confirm the following understandings reached between the deleg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ustralia during the course of negotiations regarding Chapters 7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11 (Investment) of the Agreement:

During the negotiations, the Parties discussed certain measures related to resource recycling and to policies to encourage low-emission motor vehicle distribution. The Parties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these measures relating to:

(a) the obligation to recycle products and packaging materials;

(b) the submission of recycling performance plans and results;

(c) the payment of applicable recycling levies;

(d) the obligation to distribute a certain percentage of low-emission motor vehicles; and

(e) the submission and approval of plans to distribute low-emission motor vehicles,

are not inconsistent with Article 11.9 (Performance Requirements).

During the negotiations, the Parties discussed regulations that prohibit an enterprise from concurrently holding two or more business licences to supply different services. The Parties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for the purpose of the Agreement, such restrictions are not inconsistent with Article 7.4 (Market Access).

During the negotiations, the Parties discussed existing regulations applicable to the establishment, extension, or transfer of educational institutions within certain geographical areas under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Law No. 11998, 6 August 2013). The Parties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such restrictions are not inconsistent with Article 7.4 (Market Access).

During the negotiations, the Parties discussed a measure that allows local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o jointly operate curricula only with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organised under Korean law, or with foreig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at have obtained accreditation from a foreign government or authorised foreign accreditation bodies. The Parties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such a measure is not inconsistent with Article 7.2 (National Treatment) and Article 11.3 (National Treatment).

During the negotiations, the Parties discussed a measure that may establish requirements regarding the types and quantities of raw materials for producing liquor under the *Liquors Act* (Law No. 11873, 7 June 2013) and its subordinate regulations. The Parties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such measure is not inconsistent with Article 11.9 (Performance Requirements), provided that it is appli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WTO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During the negotiations, the Parties discussed regulations that control a rail transportation company's ability to stop supplying its service, including closure or liquidation of the company. The Parties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such restrictions are not inconsistent with Article 7.4 (Market Access).

During the negotiations, the Parties discussed regulations on zoning and land use. The Parties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measures concerning zoning and land use are not inconsistent with Article 7.4 (Market Access).

I have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is letter and your letter in reply confirming that your Government shares these understandings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I have the further honour to confirm that my Government shares these understandings and that your letter and this letter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Yours sincerely

Yoon Sang-jick

8 April 2014

The Hon Andrew Robb AO, MP
Minister for Trade and Investment
Parliament House
CANBERRA ACT 2600

Dear Minister Robb

In connection with the signing on this date of the Kore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the "Agreement"), I have the honour to confirm the following understanding reached between the deleg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ustralia during the course of negotiations regarding Chapters 7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11 (Investment) of the Agreement:

Notwithstanding Article 7.1 (Scope) or Article 11.1 (Scope), for Korea, the cross-border trade in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1] is not subject to Chapter 7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in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is not subject to Chapter 11 (Investment).

For greater certainty, Korea retain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in relation to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in accordance with its respective laws or regulations.

I have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is letter and your letter in reply confirming that your Government shares this understanding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Yours sincerely

Yoon Sang-jick

[1] For greater certainty,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includes such services supplied through electronic transmission and services that use *sa-haeng-seong-ge-im-mul*, "*Sa-haeng-seong-ge-im-mul*", as defined in Article 2 of Korea's *Game Industry Promotion Act*, includes, *inter alia*, gaming instruments which result in financial loss or gain through betting or by chance.

8 April 2014

Mr Yoon Sang-jick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Seoul, Republic of Korea

Dear Minister Yoon

I have the honour to acknowledge receipt of your letter of this date, which reads as follows:

> In connection with the signing on this date of the Kore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the "Agreement"), I have the honour to confirm the following understanding reached between the deleg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ustralia during the course of negotiations regarding Chapters 7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11 (Investment) of the Agreement:
>
> > Notwithstanding Article 7.1 (Scope) or Article 11.1 (Scope), for Korea, the cross-border trade in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1] is not subject to Chapter 7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in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is not subject to Chapter 11 (Investment).
> >
> > For greater certainty, Korea retain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in relation to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in accordance with its respective laws or regulations.
>
> I have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is letter and your letter in reply confirming that your Government shares this understanding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I have the further honour to confirm that my Government shares this understanding and that your letter and this letter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Yours sincerely

Andrew Robb

[1] For greater certainty,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includes such services supplied through electronic transmission and services that use *sa-haeng-seong-ge-im-mul*. "*Sa-haeng-seong-ge-im-mul*", as defined in Article 2 of Korea's *Game Industry Promotion Act*, includes, *inter alia*, gaming instruments which result in financial loss or gain through betting or by chance.

8 April 2014

The Hon Andrew Robb AO, MP
Minister for Trade and Investment
Parliament House
CANBERRA ACT 2600

Dear Minister Robb

In connection with the signing on this date of the Kore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the "Agreement"), I have the honour to confirm the following understanding reached between the deleg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ustralia during the course of negotiations regarding each Party's Annex I entry on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 the Agreement:

> If a Party conditions the granting of a licence to supply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o a person of the Party in which a person of the other Party holds an equity interest on a finding that the supply of such services would serve the public interest, the Party shall ensure that it:
>
> (a) bases any such finding and the procedures for making such a finding on objective and transparent criteria;
>
> (b) employs a presumption in favour of finding that granting a licence to a person of the Party in which a person of the other Party holds an equity interest would serve the public interest; and
>
> (c) develops any such procedures through a rulemaking consistent with Article 9.21 (Transparency).

I have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is letter and your letter in reply confirming that your Government shares this understanding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Yours sincerely

Yoon Sang-jick

8 April 2014

Mr Yoon Sang-jick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Seoul, Republic of Korea

Dear Minister Yoon

I have the honour to acknowledge receipt of your letter of this date, which reads as follows:

> In connection with the signing on this date of the Kore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I have the honour to confirm the following understanding reached between the deleg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ustralia during the course of negotiations regarding each Party's Annex I entry on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 the Agreement:
>
> > If a Party conditions the granting of a licence to supply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o a person of the Party in which a person of the other Party holds an equity interest on a finding that the supply of such services would serve the public interest, the Party shall ensure that it:
> >
> > (a) bases any such finding and the procedures for making such a finding on objective and transparent criteria;
> >
> > (b) employs a presumption in favour of finding that granting a licence to a person of the Party in which a person of the other Party holds an equity interest would serve the public interest; and
> >
> > (c) develops any such procedures through a rulemaking consistent with Article 9.21 (Transparency).
>
> I have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is letter and your letter in reply confirming that your Government shares this understanding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I have the further honour to confirm that my Government shares this understanding and that your letter and this letter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Yours sincerely

Andrew Robb

CHAPTER 8
FINANCIAL SERVICES

ARTICLE 8.1: SCOPE

1. This Chapter shall apply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relating to:

   (a) financial institutions of the other Party;

   (b)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and investments of such investors, in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Party's territory; and

   (c) cross-border trade in financial services.

2. Chapters 7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11 (Investment) shall apply to measures described in paragraph 1 only to the extent that these Chapters or Articles of these Chapters are incorporated into this Chapter:

   (a) Articles 7.11 (Denial of Benefits), 11.7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11.8 (Transfers), 11.11 (Denial of Benefits), and 11.13 (Special Formalities and Information Requirements), are incorporated into and made part of this Chapter;

   (b) Section B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of Chapter 11 (Investment) is incorporated into and made part of this Chapter solely for claims that a Party has breached Article 11.7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11.8 (Transfers), 11.11 (Denial of Benefits), or 11.13 (Special Formalities and Information Requirements) as incorporated into this Chapter; and

   (c) Article 7.10 (Payments and Transfers) is incorporated into and made part of this Chapter to the extent that cross-border trade in financial services is subject to obligations under Article 8.5.

3. This Chapter shall not apply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relating to:

   (a) activities or services forming part of a public retirement plan or statutory system of social security; or

   (b) activities or services conducted for the account or with the guarantee or using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Party, including its public entities,

except that this Chapter shall apply to the extent that a Party allows any of the activities or servic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or (b) to be conducted by its financial institutions in competition with a public entity or a financial institution.

4. This Chapter shall not apply to laws, regulations, or requirements governing the procurement by government agencies of financial services purchased for governmental purposes and not with a view to commercial resale or use in the supply of services for commercial sale.

ARTICLE 8.2: NATIONAL TREATMENT

1. Each Party shall accord to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to its own investors, in like circumstances,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and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vestments in financial institutions in its territory.

2. Each Party shall accord to financial institutions of the other Party and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in financial institutions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to its own financial institutions, and to investments of its own investors in financial institutions, in like circumstances,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and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vestments.

3. For the purposes of the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s in Article 8.5.1, a Party shall accord to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to its own financial service suppliers, in like circumstances, with respect to the supply of the relevant service.

ARTICLE 8.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13]

Each Party shall accord to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financial institutions of the other Party, investments of investors in financial institutions, and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to the investors, financial institutions, investments of investors in financial institutions, and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of a non-Party, in like circumstances.

ARTICLE 8.4: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A Party shall not adopt or maintain, with respect to financial institutions of the other Party or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seeking to establish such institutions, either on the basis of a regional subdivision or on the basis of its entire territory, measures that:

(a) impose limitations on:

(i) the number of financial institutions whether in the form of numerical quotas, monopolies, exclusive service suppliers, or the requirements of an economic needs test;

(ii) the total value of financial service transactions or assets in the form of numerical quotas or the requirement of an economic needs test;

(iii) the total number of financial service operations or the total quantity of financial services output expressed in terms of designated numerical units in the form of quotas or the requirement of an economic needs test[14]; or

(iv) the total number of natural persons that may be employed in a particular financial service sector or that a financial institution may employ and who are necessary for, and directly related to, the supply of a specific financial service in the form of numerical quotas or the requirement of an economic needs test; or

(b) restrict or require specific types of legal entity or joint venture through which a financial institution may supply a service.

[13] For greater certainty, the treatment referred to in this Article does not encompass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or mechanisms such as those included in Section B of Chapter 11 (Investment).

[14] Subparagraph (a)(iii) does not cover measures of a Party which limit inputs for the supply of financial services.

ARTICLE 8.5: CROSS-BORDER TRADE

1. Each Party shall permit, under terms and conditions that accord national treatment,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to supply the services specified in Annex 8-A.

2. Each Party shall permit persons located in its territory, and its nationals wherever located, to purchase financial services from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locat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This obligation does not require a Party to permit such suppliers to do business or solicit in its territory. Each Party may define "doing business" and "solicit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obligation, provided that those definitions are not inconsistent with paragraph 1.

3. Without prejudice to other means of prudential regulation of cross-border trade in financial services, a Party may require the registration or authorisation of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and of financial instruments.

ARTICLE 8.6: NEW FINANCIAL SERVICES[15]

Each Party shall permit a financial institution of the other Party to supply any new financial service that the Party would permit its own financial institutions, in like circumstances, to supply without additional legislative action by the Party. Notwithstanding Article 8.4(b), a Party may determine the institutional and juridical form through which the new financial service may be supplied and may require authorisation for the supply of the service. Where a Party requires a financial institution to obtain authorisation to supply a new financial service, the Party shall decide within a reasonable time whether to issue the authorisation and the authorisation may be refused only for prudential reasons.

ARTICLE 8.7: TREATMENT OF CERTAIN INFORMATION

Further to Article 22.4 (Disclosure of Information), nothing in this Chapter requires a Party to furnish or allow access to information related to the financial affairs and accounts of individual custom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or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ARTICLE 8.8: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1. Neither Party shall require financial institutions of the other Party to engage individuals of any particular nationality as senior managerial or other essential personnel.

2. Neither Party shall require that more than a min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financial institution of the other Party be composed of nationals of the Party, persons residing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or a combination thereof.

ARTICLE 8.9: NON-CONFORMING MEASURES

1. Articles 8.2 through 8.5 and Article 8.8 shall not apply to:

(a) any existing non-conforming measure that is maintained by a Party at:

[15] The Parties understand that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financial institution of a Party from applying to the other Party to request that it authorise the supply of a financial service that is supplied in neither Party's territory. Such application shall be subject to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arty to which the application is made and, for greater certainty, shall not be subject to the obligations of this Article.

(i) the central level of government, as set out by that Party in Section A of its Schedule to Annex III;

(ii) a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as set out by that Party in Section A of its Schedule to Annex III; or

(iii) a local level of government;

(b) the continuation or prompt renewal of any non-conforming measur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or

(c) an amendment to any non-conforming measur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to the extent that the amendment does not decrease the conformity of the measure, as it existed:

(i) immediately before the amendment, with Article 8.2, 8.3, 8.4, or 8.8; or

(ii)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with Article 8.5.

2. Articles 8.2 through 8.5 and Article 8.8 shall not apply to any measure that a Party adopts or maintains with respect to sectors, sub-sectors, or activities, as set out by that Party in Section B of its Schedule to Annex III.

3. A non-conforming measure set out in a Party's Schedule to Annex I or II, to which Article 7.2 (National Treatment), 7.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11.3 (National Treatment), 11.4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or 11.10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shall not apply, shall be treated as a non-conforming measure to which Article 8.2, 8.3, 8.5.1, or 8.8.2 shall not apply, as the case may be, to the extent that the measure, sector, sub-sector, or activity set out in the entry is covered by this Chapter.

ARTICLE 8.10: EXCEPTIONS

1.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Chapter or Chapter 9 (Telecommunications), including specifically Article 9.2 (Relation to Other Chapters), Chapter 11 (Investment) or 15 (Electronic Commerce) and, in addition, Article 7.1.3, with respect to the supply of financial services in the territory of a Party by an investor of the other Party or a covered investment, a Party shall not be prevented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for prudential reason[16], including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depositors, policy holders, or persons to whom a fiduciary duty is owed by a financial institution or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 or to ensure the integrity and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Where such measures do not conform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they shall not be used as a means of avoiding the Party's commitments or obligations under such provisions.

2. Nothing in this Chapter or Chapter 9 (Telecommunications), including specifically Article 9.2 (Relation to Other Chapters), Chapter 11 (Investment), or 15 (Electronic Commerce), and, in addition, Article 7.1.3, with respect to the supply of financial services in the territory of a Party by an investor of the other Party or a covered investment, shall apply to non-discriminatory measures of general application taken by any public entity in pursuit of monetary and related credit policies or exchange rate policie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a Party's obligations under Article 11.9 (Performance Requirements) with respect to measures covered by Chapter 11 (Investment) or under Article 7.10 (Payments and Transfers) or 11.8 (Transfers).

[16] It is understood that the term "prudential reasons" includes the maintenance of the safety, soundness, integrity, or financial responsibility of individual financial institutions or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3. Notwithstanding Articles 7.10 (Payments and Transfers) and 11.8 (Transfers), as incorporated into this Chapter, a Party may prevent or limit transfers by a financial institution or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 to, or for the benefit of, an affiliate of or person related to such institution or supplier, through the equitable, non-discriminatory, and good faith application of measures relating to maintenance of the safety, soundness, integrity or financial responsi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or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This paragraph does not prejudice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that permits a Party to restrict transfers.

4. For greater certainty,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enforcing measures 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or regulations that are not inconsistent with this Chapter, including those relating to the prevention of deceptive and fraudulent practices or to deal with the effects of a default on financial services contracts,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lik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vestment in financial institutions or cross-border trade in financial services.

ARTICLE 8.11: TRANSPARENCY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transparent regulations and polici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are important in facilitating access to, and their operations in, each other's markets. Each Party commits to promote regulatory transparency in financial services.

2.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ll measures of general application to which this Chapter shall apply are administered in a reasonable, objective, and impartial manner.

3. In lieu of Article 19.1.2, each Party, to the extent possible:

(a) shall publish in advance any regulations of general application relating to the subject matter of this Chapter that it proposes to adopt and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

(b) shall provide interested persons and the other Party a reasonable opportunity to comment on such proposed regulations; and

(c) should at the time it adopts final regulations, address in writing substantive comments received from interested persons with respect to the proposed regulations.

4. To the extent possible, each Party shall allow reasonable time between publication of final regulations of general application and their effective date.

5.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the rules of general application adopted or maintained by self-regulatory organisations of the Party are promptly published or otherwise made available in such a manner as to enable interested persons to become acquainted with them.

6. Each Party shall establish or maintain appropriate mechanisms for responding to enquiries from interested persons regarding measures of general application covered by this Chapter.

7. Each Party's regulatory authorities shall make publicly available the requirements, including any documentation required, for completing applications relating to the supply of financial services.

8. On request of an applicant, a Party's regulatory authority shall inform the applicant of the status of its application. If the authority requires additional information from the applicant, it shall notify the applicant without undue delay.

9. A Party's regulatory authority shall make an administrative decision on a completed application of an investor in a financial institution, a financial institution, or a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 of the other Party relating to the supply of a financial service within 120 days, and shall promptly notify the applicant of the decision. An application shall not be considered complete until all relevant hearings are held and all necessary information is received. Where it is not practicable for a decision to be made within 120 days, the regulatory authority shall notify the applicant without undue delay and shall endeavour to make the decision within a reasonable time thereafter.

10. On request of an unsuccessful applicant, a regulatory authority that has denied an application shall, to the extent possible, inform the applicant of the reasons for denial of the application.

ARTICLE 8.12: SELF-REGULATORY ORGANISATIONS

Where a Party requires a financial institution or a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 of the other Party to be a member of, participate in, or have access to, a self-regulatory organisation to provide a financial service in or into the territory of that Party, the Party shall ensure that the self-regulatory organisation observes the obligations of Articles 8.2 and 8.3.

ARTICLE 8.13: PAYMENT AND CLEARING SYSTEMS

Under terms and conditions that accord national treatment, each Party shall grant financial institutions of the other Party established in its territory access to payment and clearing systems operated by public entities, and to official funding and refinancing facilities available in the normal course of ordinary business. This Article is not intended to confer access to the Party's lender of last resort facilities.

ARTICLE 8.14: RECOGNITION

1. A Party may recognise prudential measures of a non-Party in the application of measures covered by this Chapter. Such recognition may be:

(a) accorded autonomously;

(b) achieved through harmonisation or other means; or

(c) based on an agreement or arrangement with the non-Party.

2. A Party according recognition of prudential measures under paragraph 1 shall provide adequate opportunity to the other Party to demonstrate that circumstances exist in which there are or would be equivalent regulation, oversight, implementation of regulation, and, if appropriate, procedures concerning the sharing of information between the Parties.

3. Where a Party accords recognition of prudential measures under paragraph 1(c) and the circumstances described in paragraph 2 exist, the Party shall provide adequate opportunity to the other Party to negotiate accession to the agreement or arrangement, or to negotiate a comparable agreement or arrangement.

ARTICLE 8.15: SPECIFIC COMMITMENTS

Annex 8-B sets out certain specific commitments by each Party.

ARTICLE 8.16: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1. The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4 (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shall comprise officials of each Party from authorities responsible for financial services. Th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financial services are:

(a) for Korea,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b) for Australia,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and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 The Committee shall:

(a) supervise the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and its further elaboration;

(b) consider issues regarding financial services that are referred to it by a Party, including ways for the Parties to cooperate more effectively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and

(c) participate in investment disput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8.19.

3. The Committee shall meet annually, or as otherwise agreed, to assess the functioning of this Agreement as it applies to financial services.

ARTICLE 8.17: CONSULTATIONS

1. A Party may request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y regarding any matter arising under this Agreement that affects financial services. The other Party shall give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the request. The Parties shall report the results of their consultations to the Committee.

2. Consultations under this Article shall include officials of the authorities set out in Article 8.16.1.

ARTICLE 8.18: DISPUTE SETTLEMENT

1. Chapter 20 (Dispute Settlement) shall apply as modified by this Article to the settlement of disputes arising under this Chapter.

2. Where a Party claims that a dispute arises under this Chapter, Article 20.8 (Establishment of Panel) shall apply, except that:

(a) where the Parties so agree, the panel shall be composed entirely of panellists meeting the qualifications in paragraph 3; and

(b) in any other case:

(i) each Party may select panellists meeting the qualifications set out in paragraph 3 or Article 20.8.5; and

(ii) if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invokes Article 8.10, the chair of the panel shall meet the qualifications set out in paragraph 3,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3. Financial services panellists shall:

(a) have expertise or experience in financial services law or practice, which may include the regul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b) meet the qualifications set out in Article 20.8.5.

4. Notwithstanding Article 20.14 (Non-Implementation), where a panel finds a measure to be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and the measure under dispute affects:

(a) only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the complaining Party may suspend benefits only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b)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and any other sector, the complaining Party may suspend benefit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that have an effect equivalent to the effect of the measure in the Party's financial services sector; or

(c) only a sector other tha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the complaining Party may not suspend benefit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ARTICLE 8.19: INVESTMENT DISPUTES IN FINANCIAL SERVICES

1. Where an investor of a Party submits a claim to arbitration under Section B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of Chapter 11 (Investment), and the respondent invokes Article 8.10 as a defence,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a) the respondent shall, within 120 days of the date the claim is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Section B of Chapter 11 (Investment), submit a written request to the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for a joint determination on the issue of whether and to what extent Article 8.10 is a valid defence to the claim. The respondent shall promptly provide the tribunal, if constituted, a copy of such request. The arbitration may proceed with respect to the claim only as provided in subparagraph (d);

(b) the Committee shall attempt in good faith to make a determination as described in subparagraph (a). Any such determination shall be transmitted promptly to the disputing parties and, if constituted, to the tribunal. The determination shall be binding on the tribunal;

(c) if the Committee, within 60 days of the date by which it has received the respondent's written request for a determination under subparagraph (a), has not made a determination as described in that subparagraph, the tribunal shall decide the issue left unresolved by the Committee. The provisions of Section B of Chapter 11 (Investment) shall apply, except as modified by this subparagraph:

(i) in the appointment of all arbitrators not yet appointed to the tribunal, each disputing party shall take appropriate steps to ensure that the tribunal has expertise or experience as described in Article 8.19.3(a). The expertise or experience of particular candidates with respect to financial service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in the appointment of the presiding arbitrator;

(ii) if, prior to the submission of the request for a determination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a), the presiding arbitrator has been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B of Chapter 11 (Investment), such arbitrator shall be replaced on request of either disputing party and the tribunal shall be re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c)(i). If, within 30 days of the date the arbitration proceedings are resumed under subparagraph (d), the disputing parties have not agreed on the appointment of a new presiding arbitrator, the Secretary-General, on request of a disputing party, shall appoint the presiding arbitrator consistent with subparagraph (c)(i); and

(iii) the Party of the claimant may make oral and written submissions to the tribunal regarding the issue of whether and to what extent Article 8.10 is a valid defence to the claim. Unless it makes such a submission, the Party of the claimant shall be presumed, for the purposes of the arbitration, to take a position on Article 8.10 not inconsistent with that of the respondent; and

(d) the arbitr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may proceed with respect to the claim:

(i) 10 days after the date the determination of the Committee has been received by the disputing parties and, if constituted, the tribunal; or

(ii) 10 day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60-day period extended to the Committee in subparagraph (c).

2. The definitions of the following terms set out in Article 11.28 (Definitions) are incorporated into this Article, *mutatis mutandis*: claimant, disputing parties, disputing party, respondent, and Secretary-General.

ARTICLE 8.20: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 of a Party means a person of a Party that is engaged in the business of supplying a financial servic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and that seeks to supply or supplies a financial service through the cross-border supply of such services;

cross-border trade in financial services or **cross-border supply of financial services** means the supply of a financial service:

(a) from the territory of a Party in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b) in the territory of a Party by a person of that Party to a person of the other Party; or

(c) by a national of a Par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but does not include the supply of a financial service in the territory of a Party by an investment in that territory;

financial institution means any financial intermediary or other enterprise that is authorised to do business and regulated or supervised as a financial institution under the law of the Party in whose territory it is located;

financial institution of the other Party means a financial institution, including a branch, locat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that is controlled by persons of the other Party;

financial service means any service of a financial nature. Financial services include all insurance and insurance-related services, and all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as well as services incidental or auxiliary to a service of a financial nature. Financial services include the following activities:

Insurance and insurance-related services

(a) direct insurance (including co-insurance):

(i) life; and

(ii) non-life;

(b) reinsurance and retrocession;

(c) insurance intermediation, such as brokerage and agency;

(d) services auxiliary to insurance, such as consultancy, actuarial, risk assessment and claim settlement services;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e) acceptance of deposits and other repayable funds from the public;

(f) lending of all types, including consumer credit, mortgage credit, factoring and financing of commercial transactions;

(g) financial leasing;

(h) all payment and money transmission services, including credit, charge and debit cards, traveller's cheques and bankers drafts;

(i) guarantees and commitments;

(j) trading for own account or for account of customers, whether on an exchange, in an over-the-counter market, or otherwise, the following:

(i) money market instruments (including cheques, bills, certificates of deposits);

(ii) foreign exchange;

(iii) derivative produc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futures and options;

(iv) exchange rate and interest rate instruments, including products such as swaps, forward rate agreements;

(v) transferable securities; and

(vi) other negotiable instruments and financial assets, including bullion;

(k) participation in issues of all kinds of securities, including underwriting and placement as agent (whether publicly or privately) and provision of services related to such issues;

(l) money broking;

(m) asset management, such as cash or portfolio management, all forms of collective investment management, pension fund management, custodial, depository and trust services;

(n) settlement and clearing services for financial assets, including securities, derivative products and other negotiable instruments;

(o) provision and transfer of financial information, and financial data processing and related software by suppliers of other financial services; and

(p) advisory, intermediation, and other auxiliary financial services on all the activities listed in subparagraphs (e) through (o), including credit reference and analysis, investment and portfolio research and advice, advice on acquisitions and on corporate restructuring and strategy;

financial service supplier of a Party means a person of a Party that is engaged in the business of supplying a financial service with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investment means "investment" as defined in Article 11.28 (Definitions), except that, with respect to "loans" and "debt instruments" referred to in that Article:

(a) a loan to or debt instrument issued by a financial institution is an investment only where it is treated as regulatory capital by the Party in whose territory the financial institution is located; and

(b) a loan granted by or debt instrument owned by a financial institution, other than a loan to or debt instrument issued by a financial institu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is not an investment;

For greater certainty, a loan granted by, or debt instrument owned by, a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 other than a loan to or debt instrument issued by a financial institution, is an investment for the purposes of Chapter 11 (Investment), if such loan or debt instrument meets the criteria for investments set out in Article 11.28 (Definitions);

investor of a Party means a Party, or a national or an enterprise of a Party, that seeks to make, is making, or has made an investmen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provided, however, that a national who is a dual national shall be deemed to be exclusively a national of the State of his or her dominant and effective nationality;

new financial service means a financial service not supplied in the Party's territory that is supplied with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and includes any new form of delivery

of a financial service or the sale of a financial product that is not sold in the Party's territory;

person of a Party means "person of a Party" as defined in Article 1.4 (Definitions) and, for greater certainty, does not include a branch of an enterprise of a non-Party;

public entity means a central bank or monetary authority of a Party, or any financial institution owned or controlled by a Party; a central bank or monetary authority of a Party, or any financial institution that performs a financial regulatory function and is owned or controlled by a Party[17], shall not be considered a state enterprise/state-owned enterprise for the purposes of Article 14.4 (Competitive Neutrality); and

self-regulatory organisation means any non-governmental body, including any securities or futures exchange or market, clearing agency, or other organisation or association, that exercises regulatory or supervisory authority ov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or financial institutions, by statute or delegation from central,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or authorities. A self-regulatory organisation shall not be considered a state enterprise/state-owned enterprise for the purposes of Article 14.4 (Competitive Neutrality).

[17]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of Korea shall be deemed to be within the definition of public entity for the purposes of Chapter 14 (Competition Policy).

ANNEX 8-A
CROSS-BORDER TRADE

Korea

Insurance and insurance-related services

1. Article 8.5.1 shall apply to the cross-border supply of or trade in financial services as defined in subparagraph (a) of the definition of cross-border supply of financial services in Article 8.20 with respect to:

(a) insurance of risks relating to:

(i) maritime shipping and commercial aviation and space launching and freight (including satellites), with such insurance to cover any or all of the following: the goods being transported, the vehicle transporting the goods, and any liability arising therefrom; and

(ii) goods in international transit;

(b) reinsurance and retrocession;

(c) services auxiliary to insurance, such as consultancy[18], risk assessment[19], actuarial and claim settlement services; and

(d) insurance intermediation, such as brokerage and agency a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c) of the definition of financial service in Article 8.20 of insurance of risks related to services listed in subparagraphs (a) and (b) of this paragraph.

2. Article 8.5.1 shall apply to the cross-border supply of or trade in financial services as defined in subparagraph (c) of the definition of cross-border supply of financial services in Article 8.20 with respect to services auxiliary to insurance, such as consultancy, actuarial, risk assessment and claim settlement services.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3. Article 8.5.1 shall apply only with respect to:

(a) the provision and transfer of financial information[20];

(b) the provision and transfer of financial data processing and related software relating to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a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o) of the definition of financial service in Article 8.20, by no later than two year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21]; and

[18] "Consultancy" means activities such as providing advice on corporate strategy formulation, marketing strategy, or product development strategy.

[19] "Risk assessment" means activities such as risk analysis, risk prevention, or expert advice related to difficult or unusual risks.

[20] For greater certainty, "financial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5(a) does not include general financial or business information that is included within a general circulation publication or provided for a general audience.

[21] It may be subject to prior authorisation from the relevant regulator.

(c) advisory and other auxiliary services, excluding intermediation, relating to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a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p) of the definition of financial service in Article 8.20. This commitment applies to the supply of credit rating, credit reference and investigation, general fund administration, indirect investment vehicle appraisal, and bond appraisal with regard to securities issued in Korea[22] only to the extent that Korea allows the supply of these services with respect to such assets. This commitment does not apply to:

(i) credit rating of enterprises in Korea; or

(ii) credit reference and investigation undertaken for purposes of lending and other financial transactions in Korea with respect to individuals or companies in Korea.

Australia

Insurance and insurance-related services

4. Article 8.5.1 shall apply to the cross-border supply of or trade in financial services as defined in subparagraph (a) of the definition of cross-border supply of financial services in Article 8.20 with respect to:

(a) insurance of risks relating to:

(i) maritime shipping and commercial aviation and space launching and freight (including satellites), with such insurance to cover any or all of the following: the goods being transported, the vehicle transporting the goods, and any liability arising therefrom; and

(ii) goods in international transit;

(b) reinsurance and retrocession;

(c) services auxiliary to insurance, such as consultancy, risk assessment, actuarial and claim settlement services; and

(d) insurance intermediation, such as brokerage and agency a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c) of the definition of financial service in Article 8.20 of insurance of risks related to services listed in subparagraphs (a) and (b) of this paragraph.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5. Article 8.5.1 shall apply only with respect to:

(a) the provision and transfer of financial information;

(b) the provision and transfer of financial data processing and related software relating to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a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o) of the definition of financial service in Article 8.20; and

[22] At the time of signature of this Agreement, securities issued in the territory of Korea are denominated solely in Korean won, except in extraordinary circumstances. Where bonds issued outside the territory of Korea are held by a Korea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registered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ppraisal of the bond must be undertaken by a bond appraisal company in the territory of Korea.

(c) advisory and other auxiliary services, excluding intermediation, relating to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a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p) of the definition of financial service in Article 8.20.

ANNEX 8-B
SPECIFIC COMMITMENTS

Section A: Transfer of Information

1. Each Party shall allow a financial institution of the other Party to transfer information in electronic or other form, into and out of its territory, for data processing where such processing is required in the institution's ordinary course of business. Korea shall give effect to this commitment no later than two year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in no case later than the effective date of similar commitments stemming from other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2. Nothing in paragraph 1 shall restrict the right of a Party to protect sensitive information of consumers and to prohibit unauthorised reuse of such information so long as such right is not used as a means of avoiding the Party's commitments or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The Parties reserve the right of their financial regulators to have access to records of financial services suppliers relating to the handling of such information and to require for the location of technology facilities.

Section B: Performance of Functions

1. The Parties recognise the benefits of allowing a financial institution in a Party's territory to perform certain functions at its head office or affiliates located inside or outside the Party's territory[23]. To the extent possible, each Party shall allow such an office or affiliate to perform these functions. These functions generall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a) trade and transaction processing functions, including confirmation and statement production;

(b) technology-related functions, such as data processing[24], programming, and system development;

(c) administrative services, including procurement, travel arrangements, mailing services, physical security, office space management, and secretarial services;

(d) human resource activities, including training and education;

(e) accounting functions, including bank reconciliation, budgeting, payroll, tax, account reconciliation, and customer and proprietary accounting; and

(f) legal functions, including the provision of advice and litigation strategy.

2. Nothing in paragraph 1 shall prevent a Party from requiring a financial institution located in its territory to retain certain functions.

Section C: Supervisory Cooperation

The Parties support the efforts of their respective financial regulators to provide assistance to the regulators of the other Party to enhance consumer protection and those regulators' ability to prevent, detect, and prosecute unfair and deceptive practices. Each Party confirms that its financial regulators have the legal authority to exchange information in support of those efforts. The Parties shall encourage financial regulators to continue their ongoing efforts to strengthen this cooperation through bilateral consultations or bilateral or multilateral international cooperative mechanisms, such as memoranda of understanding or *ad hoc* undertakings.

Section D: Certain Government Entities

The Parties confirm that the following entities shall not be considered financial institu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 Export-Import Bank of Korea;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Korea Technology Credit Guarantee Fund; Credit Guarantee Fund;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KAMCO); Korea Finance Corporation (KoFC); and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KIC). The Parties further recognise that Korea Post is currently a government agency that is not regulated as a financial institution.

Section E: Cross-Border Trade

A Party may require a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 of the other Party to provide information, solely for informational or statistical purposes, on the financial services it has supplied with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The Party shall protect such business information that is confidential from any disclosure that would prejudice the competitive position of the supplier.

Section F: Chief Executive Officer

For greater certainty, nothing in Article 8.8 shall limit a Party's ability to require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a financial institution established under its laws to reside within its territory.

Section G: Portfolio Management

1. A Party shall allow a financial institution (other than a trust company), organised outside its territory, to provide investment advice and portfolio management services, excluding custodial services, trustee services, and execution services that are not related to managing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to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located in its territory. This commitment is subject to Articles 8.1 and 8.5.3.

2.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with regard to Korean won-denominated assets, the supply of investment advice or portfolio management services applies only to the extent that Korea allows the supply of these services with respect to such assets.

3.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means:

(a) for Korea, any of the schemes established for making collective investment as defined under articles 9.18.1 through 9.18.6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SCMA); and

[23] For greater certainty, a financial institution locat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retains ultimate responsibility for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applicable to those functions performed by its head office or affiliate.

[24] To the extent that a Party is obligated under Section B of Annex 8-B to allow the transfer of information outside its territory, that Party shall also allow data processing of that information after the transfer.

(b) for Australia:

(i) a managed investment scheme as defined under section 9 of the *Corporations Act 2001*, other than a managed investment scheme operated in contravention of subsection 601ED(5) of the *Corporations Act 2001*; or

(ii) an entity that:

(A) carries on a business of investment in securities, interests in land, or other investments; and

(B) in the course of carrying on that business, invests funds subscribed, whether directly or indirectly, after an offer or invitation to the public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82 of the *Corporations Act 2001*) made on terms that the funds subscribed would be invested.

Section H: Government Procurement

1. Notwithstanding Article 8.1.4, each Party shall apply Articles 8.2 and 8.3 with respect to the acquisition or procurement of the following services to the extent this Chapter shall apply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the Party relating to activities or services set out in Article 8.1.3(a) and (b):

(a) services related to the sale, redemption, and distribution of central government debt;

(b) services related to the holding of central government fiscal and depository accounts; and

(c) service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the following assets:

(i) for Korea, assets of the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and

(ii) for Australia, assets of the Future Fund.

CHAPTER 9
TELECOMMUNICATIONS

ARTICLE 9.1: SCOPE

1. This Chapter shall apply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affecting trade in telecommunications services.

2. Except to ensure that enterprises operating broadcast stations and cable systems have continued access to and use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this Chapter shall not apply to any measure relating to broadcast or cable distribution of radio or television programming.

3.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be construed to require a Party to compel any enterprise to:

(a) establish, construct, acquire, lease, operate, or provide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not offered to the public generally; or

(b) make available its broadcast or cable facilities as a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 where the enterprise is exclusively engaged in the broadcast or cable distribution of radio or television programming.

ARTICLE 9.2: RELATION TO OTHER CHAPTERS

In the event of any inconsistency between this Chapter and another Chapter, this Chapter shall prevail to the extent of the inconsistency.

Section A: Access to and Use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ARTICLE 9.3: ACCESS AND USE

1.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have access to and use of any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 or service, including leased circuits, offered in its territory or across its borders on a timely basis, and on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 and conditions, including as set out in paragraphs 2 through 6.

2.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are permitted to:

(a) purchase or lease, and attach terminal or other equipment that interfaces with a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

(b) provide services to individual or multiple end-users over owned or leased circuits;

(c) connect owned or leased circuits with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in the territory, or across the borders, of that Party, or with circuits leased or owned by another service supplier;

(d) perform switching, signalling, processing and conversion functions; and

(e) use operating protocols of their choice in the supply of any service.

3.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may use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for the movement of information in its territory or across its borders, including for intra-corporate communications, and for access to information contained in databases or otherwise stored in machine-readable form in the territory of either Party or any non-Party which is a party to the WTO Agreement.

4. Notwithstanding paragraph 3, a Party may take such measures as are necessary to:

(a) ensure the security and confidentiality of messages; and

(b) protect the privacy of personal data of end-us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provided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that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in services.

5.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no condition is imposed on access to and use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other than as necessary to:

(a) safeguard the public service responsibilities of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in particular their ability to make their networks or services available to the public generally; or

(b) protect the technical integrity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6. Provided that they satisfy the criteria set out in paragraph 5, conditions for access to and use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may include:

(a) a requirement to use specified technical interfaces, including interface protocols, for interconnection with such networks or services;

(b) requirements, where necessary, for the inter-operability of such networks or services; and

(c) type approval of terminal or other equipment which interfaces with the network and technical requirements relating to the attachment of such equipment to such networks.

Section B: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ARTICLE 9.4: OBLIGATIONS RELATING TO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25]

Interconnection

1.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in its territory provide, directly or indirectly, interconnection with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of the other Party. The rates, terms and conditions of such interconnection will generally be determined through commercial negotiation between the service suppliers concer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arty; and

(b) in carrying out subparagraph (a),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in its territory take reasonable steps to protect the confidentiality of commercially sensitive information of, or relating to, suppliers and end-us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and only use such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these services.

Number Portability

2.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in its territory provide number portability to the extent technically feasible, on a timely basis, and on terms and conditions that are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Dialling Parity

3.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 its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body has the authority to require that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 its territory provide dialling parity within the same category of service to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of the other Party; and

(b)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of the other Party are afforded non-discriminatory access to telephone numbers.

Section C: Additional Obligations Relating to Major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26]

ARTICLE 9.5: TREATMENT BY MAJOR SUPPLIERS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major suppliers in its territory accord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such major suppliers accord in like circumstances to its subsidiaries, its affiliates, or non-affiliated service suppliers regarding:

(a) the availability, provisioning, rates, or quality of like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and

(b) the availability of technical interfaces necessary for interconnection.

ARTICLE 9.6: COMPETITIVE SAFEGUARDS

1. Each Party shall maintain appropriate measures for the purposes of preventing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that, alone or together, are a major supplier in its territory, from engaging in or continuing anticompetitive practices.

2. The anticompetitive practic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include, in particular:

(a) engaging in anticompetitive cross-subsidisation;

[25] This Article is subject to Annex 9-A.

[26] This Section is subject to Annex 9-B.

(b) using information obtained from competitors with anticompetitive results;

(c) not making available, on a timely basis, to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technical information about essential facilities and commercially relevant information that are necessary for them to provide services; and

(d) pricing services in a manner that is likely to unreasonably restrict competition, including predatory pricing.

ARTICLE 9.7: RESALE

1.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major suppliers in its territory do not impose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conditions or limitations on the resale of their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by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of the other Party, where such conditions or limitations would have anticompetitive results.

2. Where a Party requires a major supplier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 its territory to offer for resale, to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of the other Party,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hat such major supplier provides at retail to end-users that are not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t shall ensure that such services are offered for resale at reasonable rates[27].

ARTICLE 9.8: UNBUNDLING OF NETWORK ELEMENTS

Each Party shall provide its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body with the authority to require major suppliers in its territory to provide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of the other Party, on a timely basis, access to network elements for the provision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on an unbundled basis, and on terms and conditions, and at cost-oriented rates, that are reasonable, non-discriminatory and transparent.

ARTICLE 9.9: INTERCONNECTION

1.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major suppliers in its territory provide interconnection for the facilities and equipment of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of the other Party:

(a) at any technically feasible point in the major supplier's network;

(b) under non-discriminatory terms, conditions (including technical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and rates;

(c) of a quality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provided by the major supplier for its own like services, for like services of non-affiliated service suppliers, or for its subsidiaries or other affiliates;

(d) in a timely fashion, and on terms and conditions (including technical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and at cost-oriented rates, that are transparent, reasonable, having regard to economic feasibility, and sufficiently unbundled so that the suppliers seeking interconnection need not pay for network components or facilities that they do not require for the service to be provided; and

(e) on request, at points in addition to the network termination points offered to the majority of users, subject to charges that reflect the cost of construction of necessary additional facilities.

2.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of the other Party may interconnect their facilities and equipment with those of major suppliers in its territory in accordance with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options[28]:

(a) a reference interconnection offer or another standard interconnection offer containing the rates, terms, and conditions that the major supplier offers generally to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b)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n existing interconnection agreement; or

(c) through negotiation of a new interconnection agreement.

3.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pplicable procedures for interconnection negotiations with major suppliers in its territory are made publicly available.

4.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major suppliers in its territory may be required to file interconnection agreements with the Party's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body.

5. Each Party shall ensure, where interconnection is provided under paragraph 2(a), that the rates, terms and conditions are made publicly available.

ARTICLE 9.10: PROVISIONING AND PRICING OF LEASED CIRCUIT SERVICES

1.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major suppliers in its territory provide to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of the other Party leased circuit services that are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on terms and conditions, and at rates, that are reasonable, non-discriminatory and transparent.

2. In carrying out paragraph 1, each Party shall provide its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body with the authority to require major suppliers in its territory to offer leased circuit services that are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o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of the other Party at capacity-based, cost-oriented prices.

ARTICLE 9.11: CO-LOCATION

1.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major suppliers in its territory provide to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of the other Party physical co-location of equipment necessary for interconnection or access to unbundled network elements on a timely basis and on terms and conditions, and at cost-oriented rates, that are reasonable, non-discriminatory and transparent.

[27]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2:

(a) a Party may determine reasonable rates through any methodology it considers appropriate; and

(b) wholesale rates, set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a Party, shall be considered reasonable.

[28] For Australia, these options include arbitration.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physical co-location is not practical for technical reasons or because of space limitations,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major suppliers in its territory provide an alternative solution on a timely basis and on terms and conditions, and at cost-oriented rates, that are reasonable, non-discriminatory and transparent.

3. Each Party may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which premises in its territory are subject to paragraphs 1 and 2.

ARTICLE 9.12: ACCESS TO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1.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major suppliers in its territory provide access to poles, ducts, conduits, rights of way and any other structures deemed necessary by the Party, owned or controlled by major suppliers to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of the other Party in the Party's territory on a timely basis and on terms and conditions, and at rates, that are reasonable, non-discriminatory and transparent.

2. Each Party may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the poles, ducts, conduits, rights of way or other structures to which it requires major suppliers in its territory to provide access under paragraph 1.

Section D: Other Measures

ARTICLE 9.13: SUBMARINE CABLE SYSTEMS

Where a supplier of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operates a submarine cable system to provide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the Party in whose territory the supplier is located shall ensure that such supplier accords the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 networks or services of the other Party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reatment with respect to access[29] to that submarine cable system (including landing facilities) in its territory.

ARTICLE 9.14: CONDITIONS FOR THE SUPPLY OF VALUE-ADDED SERVICES

1. Neither Party shall require a service supplier in its territory that it classifies as a supplier of value-added services and that supplies those services over facilities that the supplier does not own to:

(a) supply those services to the public generally;

(b) cost-justify its rates for those services;

(c) file a tariff for those services;

(d) connect its networks with any particular customer for the supply of those services; or

(e) conform with any particular standard or technical regul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body for connecting to any other network, other than a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Party may take the actions described in paragraph 1 to remedy a practice of a supplier of value-added services that the Party has found in a particular case to be anticompetitive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or to otherwise promote competition or safeguard the interests of consumers.

ARTICLE 9.15: INDEPENDENT REGULATORY BODIES

1.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body is separate from and functionally independent of any supplier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To this end,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body does not own equity[30] or maintain an operating or management role in any such supplier.

2.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the decisions and procedures of its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body are impartial with respect to all market participants[31] and shall be made and implemented on a timely basis.

ARTICLE 9.16: UNIVERSAL SERVICE

Each Party shall administer any universal service obligation that it maintains in a transparent, non-discriminatory and competitively neutral manner and shall ensure that its universal service obligation is not more burdensome than necessary for the kind of universal service that it has defined.

ARTICLE 9.17: LICENSING PROCESS

1. When a Party requires a supplier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to have a licence, the Party shall make publicly available:

(a) all the licensing criteria and procedures it applies;

(b) the period it normally requires to reach a decision concerning an application for a licence; and

(c)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ll licences in effect.

2.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on request, an applicant receives the reasons for the denial of, revocation of, refusal to renew, or imposition of conditions on, a licence.

[29] For greater certainty:

(a) access to submarine cable landing facilities is subject to capacity; and

(b) with respect to access for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of the other Party that do not own facilities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a Party may comply with this provision by ensuring access to submarine cable systems through facilities leased from, or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provided by, a supplier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licensed in its territory.

[30] For greater certainty, this paragraph shall not prohibit a government entity of a Party other than the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body from owning equity in a supplier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31] For greater certainty, the term "market participants" includes service suppliers seeking to participate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ARTICLE 9.18: ALLOCATION AND USE OF SCARCE TELECOMMUNICATIONS RESOURCES

1. Each Party shall administer its procedures for the allocation and use of scarce telecommunications resources, including frequencies, numbers, and rights of way, in an objective, timely, transparent and non-discriminatory manner.

2. Each Party shall make publicly available the current state of allocated frequency bands but shall not be required to provide detailed identification of frequencies allocated or assigned for specific government uses.

3. For greater certainty, a Party's measures allocating and assigning spectrum and managing frequency are not measures that are *per se* inconsistent with Article 7.4 (Market Access) either as it applies to Chapter 7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or through the operation of Article 7.1 (Scope) to Chapter 11 (Investment). Accordingly, each Party shall retain the right to establish and apply spectrum and frequency management policies that may have the effect of limiting the number of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provided that it does so in a manner consistent with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is includes the ability to allocate frequency bands, taking into account current and future needs.

4.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allocate and assign spectrum for non-government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 a transparent manner that considers the overall public interest, including the encouragement of the economically efficient use of the spectrum and competition among suppliers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nd recognising that a Party may encourage such activities through a variety of means, including through administrative incentive pricing, auctions, or unlicensed use.

ARTICLE 9.19: ENFORCEMENT

1. Each Party shall provide its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body with the authority to enforce the Party's measures relating to the obligations in Articles 9.3 through 9.13.

2. Such authority shall include the ability to impose, or seek from administrative or judicial bodies, effective sanctions, which may include financial penalties, injunctive relief (on an interim or final basis), corrective orders, or the modification, suspension, or revocation of licences.

ARTICLE 9.20: RESOLUTION OF TELECOMMUNICATIONS DISPUTES

Further to Articles 19.3 (Administrative Proceedings) and 19.4 (Review and Appeal),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Recourse

(a)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may have recourse to a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body or other relevant body of the Party to resolve disputes between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on a timely basis regarding measures relating to matters in Articles 9.3 through 9.13;

(b)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of the other Party that have requested interconnection with a major supplier in the Party's territory may have recourse, within a reasonable and publicly specified period after the supplier requests interconnection, to a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body or other relevant body to resolve disputes regarding the terms, conditions, and rates for interconnection with such major supplier; and

Judicial Review

(c) any service supplier whose legally-protected interests are adversely affected by a determination or decision of the Party's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body may obtain review of the determination or decision by an impartial and independent judicial authority of the Party. Neither Party shall permit the making of an application for judicial review to constitute grounds for non-compliance with the determination or decis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body, unless the relevant judicial body otherwise determines.

ARTICLE 9.21: TRANSPARENCY

Further to Article 19.1 (Publication),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 regulatory decisions, including the basis for such decisions, of its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body are promptly published or otherwise made available to all interested persons;

(b) its measures relating to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are made publicly available, including:

(i) tariffs and other terms and conditions of service;

(ii) specifications of technical interfaces;

(iii) conditions for attaching terminal or other equipment to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iv) notification, permit, registration, or licensing requirements, if any;

(v) the amendment and adoption of measures concerning technologies or standards affecting access and use; and

(vi) procedures relating to judicial or administrative review; and

(c) its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body or other relevant body provides, on request by a supplier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of the other Party, a written explanation of reasons for any decision that denies access of the kind specified in Articles 9.9, 9.11 and 9.12.

ARTICLE 9.22: MEASURES CONCERNING TECHNOLOGIES AND STANDARDS[32]

1. Neither Party shall prevent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or value-added services from having the flexibility to choose the technologies that they use to supply their services.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Party may apply a measure that limits the technologies or standards that a supplier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or value-added

[32] For greater certainty, except for paragraph 1,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measures adopted befor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services may use to supply its services, provided that the measure is designed to satisfy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and is not prepared, adopted or applied in a manner that creates unnecessary obstacles to trade[33].

ARTICLE 9.23: CONSULTATION WITH INDUSTRY

Each Party shall facilitate consultation with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of the other Party operating in its territory in the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s policy, regulations and standards in a manner that is open to any participant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ARTICLE 9.24: RELATION TO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standards for global compatibility and inter-operability of tele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and undertake to promote such standards through the work of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sation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RTICLE 9.25: COMMITTEE ON TELECOMMUNICATIONS

1. For the purposes of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is Chapter, the Committee on Telecommunication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4 (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shall comprise officials of each Party, including officials responsible for telecommunications.

2. The Committee shall:

   (a) review and monitor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is Chapter; and

   (b) discuss any issues related to this Chapter, and other issues relevant to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s of the Parties.

3. Further to Article 21.4 (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the Committee shall, as appropriate, report its findings and the outcomes of its discussions to the Joint Committee.

4. The Committee shall meet as agreed by the Parties.

5. The Parties may invite, by mutual consent, representatives of relevant entities other than the governments of the Parties, including those from the private sector, with the necessary expertise relevant to the issues to be discussed, to attend meetings of the Committee.

[33] For greater certainty:

   (a) a Party retains the right to define its own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and

   (b) whenever such a measure is based on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it shall be rebuttably presumed not to create unnecessary obstacles to trade.

Section E: Definitions

ARTICLE 9.26: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co-location (physical) means physical access to space in order to install, maintain, or repair equipment at premises owned or controlled and used by a major supplier to provide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commercial mobile services means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supplied through mobile wireless means;

cost-oriented means based on cost, and may include a reasonable profit and may involve different cost methodologies for different facilities or services;

dialling parity means the ability of an end-user to use an equal number of digits to access the same type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 regardless of the supplier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chosen by such end-user and in a way that involves no unreasonable dialling delays;

end-user means a final consumer of or subscriber to a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 including a service supplier other than a supplier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essential facilities means facilities of a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 or service that:

   (a) are exclusively or predominantly provided by a single or limited number of suppliers; and

   (b) cannot feasibly be economically or technically substituted in order to provide a service;

interconnection means linking with suppliers providing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 order to allow the users of one supplier to communicate with users of another supplier and to access services provided by another supplier;

leased circuits means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between two or more designated points that are set aside for the dedicated use of, or availability to, a user or users;

major supplier means a supplier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hat has the ability to materially affect the terms of participation (having regard to price and supply) in the relevant market for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s a result of:

   (a) control over essential facilities; or

   (b) use of its position in the market;

network element means a facility or equipment used in supplying a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 including features, functions, and capabilities provided by means of that facility or equipment;

non-discriminatory means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accorded to any other user of like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in like circumstances;

number portability means the ability of end-us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o retain, at the same location, the same telephone numbers when switching between suppliers of the same type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 means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used to provide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means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or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 means any telecommunications service that is offered to the public generally. Such services may include, inter alia, telephone and data transmission typically involving customer-supplied information between two or more points without any end-to-end change in the form or content of the customer's information, and excludes value-added services;

service supplier of the other Party means a person of the other Party that seeks to supply or supplies a service, including a supplier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telecommunications means the transmission and reception of signals by any electromagnetic means;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body means any body or bodies at the central level of government responsible for the regulation of telecommunications;

user means an end-user or a supplier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and

value-added services means services that add value to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hrough enhanced functionality. For Korea, these are services as defined in subparagraph 12 of Article 2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For Australia, these ar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for which suppliers add value to customer information by enhancing its form or content or by providing for its storage or retrieval.

ANNEX 9-A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Korea

Article 9.4.3 shall not apply to Korea with respect to suppliers of international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NNEX 9-B
EXEMPTIONS FROM SECTION C: ADDITIONAL OBLIGATIONS RELATING TO MAJOR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Korea

1. Major suppliers shall be exempt from the application of the obligations specified in Articles 9.8, 9.9.1(a), 9.9.1(e), 9.11 and 9.12 to the extent that the supplier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services of the other Party is a non-facilities based supplier.

2. Notwithstanding Articles 9.9.1(b), 9.9.1(d) and 9.10, Korea may permit major suppliers to offer rates, terms, and conditions to non-facilities based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hat are discriminatory compared to the rates, terms and conditions offered to facilities-based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For greater certainty, this provision does not derogate from Article 9.20, and non-facilities based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may have recourse to the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body or other relevant body regarding disputes over such rates, terms, and conditions.

3. Consistent with Article 5.3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 "non-facilities based supplier" is a licensed supplier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hat does not own wire or wireless lines or other transmission facilities, but may own a switch, router, or multiplexer, and supplies its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hrough transmission facilities of a licensed facilities-based supplier.

4. Major suppliers shall be exempt from the application of the obligations specified in Articles 9.5, 9.7, 9.8 and Articles 9.10, 9.11 and 9.12 to the extent that they are supplying commercial mobile services.

CHAPTER 10
MOVEMENT OF NATURAL PERSONS

ARTICLE 10.1: SCOPE

1. This Chapter shall apply to measures affecting the movement of natural persons of a Party in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under any of the categories referred to in Annex 10-A.

2. This Chapter reflects the mutually beneficial trading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the Parties' mutual desire to facilitate temporary entry for business persons on a reciprocal basis and to establish transparent criteria and procedures for temporary entry, and the need to ensure border security and to protect the domestic labour force and permanent employment 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3. This Chapter shall not apply to measures affecting natural persons of a Party seeking access to the employment market of the other Party, nor to measures regarding citizenship, or residence or employment on a permanent basis.

4. This Chapter shall not prevent a Party from applying measures to regulate the entry of natural persons of the other Party into, or their temporary stay in, its territory, including those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the integrity of, and to ensure the orderly movement of natural persons across, its borders, provided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such a manner as to nullify or impair the benefits accruing to the other Party under this Chapter.

5. The sole fact of requiring persons to meet eligibility requirements prior to entry into the territory of a Party shall not be regarded as nullifying or impairing the benefits accruing to the other Party under this Chapter.

ARTICLE 10.2: RELATION TO OTHER CHAPTERS

Except for this Chapter, Chapters 1 (Initial Provisions and Definitions), 20 (Dispute Settlement) to the extent permitted by Article 10.6, 21 (Institutional Provisions), 22 (General Provisions and Exceptions) and 23 (Final Provisions) and Articles 19.1 (Publication), 19.2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19.3 (Administrative Proceedings),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impose any obligation on a Party regarding its immigration measures within the scope of this Chapter.

ARTICLE 10.3: GRANT OF TEMPORARY ENTRY

1. Each Party shall set out in Annex 10-A the specific commitments it undertakes for each of the categories of natural persons specified therein.

2. Each Party shall grant temporary entry to natural persons of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this Chapter, including the terms of the categories in Annex 10-A, provided that the natural persons comply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granting Party applicable to temporary entry, and any measures taken in accordance with them.

3. Neither Party shall impose or maintain any limitations on the total number of visas to be granted to natural persons of the other Party under this Chapter,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Annex 10-A[34].

[34] For greater certainty, for Australia the term 'limitations' includes numerical quotas or the requirement of an economic needs test.

ARTICLE 10.4: REQUIREMENTS AND PROCEDURES RELATING TO THE MOVEMENT OF NATURAL PERSONS

1.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establish or maintain immigration formalities, which can be granted prior to arrival in its territory, to allow natural persons covered by this Chapter entry into and temporary stay in its territory.

2. Each Party shall expeditiously process complete applications for immigration formalities received from natural persons of the other Party covered by this Chapter, including further immigration formality requests or extensions thereof.

3. Each Party shall, on request and within a reasonable period after a complete application by a natural person of the other Party covered by this Chapter requesting temporary entry is lodged, notify the applicant of:

(a) receipt of the application;

(b) the status of the application; and

(c) the decision concerning the application, including:

(i) if approved, the period of stay and other conditions; or

(ii) if refused, the reasons for refusal and any avenues for review.

4.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fees charged by its competent authorities on applications for immigration formalities do not in themselves represent an unjustifiable impediment to the movement of natural persons of the other Party under this Chapter.

5.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simplify the procedures and requirements relating to the movement of natural persons of the other Party, within the framework of its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10.5: ONLINE LODGEMENT AND PROCESSING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the extent possible, to provide facilities for online lodgement and processing of immigration formalities.

ARTICLE 10.6: DISPUTE SETTLEMENT

1. The Parties shall make every attempt through cooperation and consultations to arrive at a mutually satisfactory resolution of any matter that might affect the operation of this Chapter.

2.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provided in Chapter 20 (Dispute Settlement) shall not apply to this Chapter unless:

(a) the matter involves a pattern of practice; and

(b) the natural persons of a Party concerned have exhausted administrative remedies, where available, regarding the particular matter.

3. The remedies referred to in paragraph 2(b) shall be deemed to be exhausted if a final determination in the matter has not been issued within one year after the date of the institution of proceedings (not including any review or appeal) for such remedy, and the failure to issue such a determination is not attributable to delays caused by the natural persons concerned.

ARTICLE 10.7: TRANSPARENCY

Further to Articles 19.1 (Publication) and 19.2 (Provision of Information), each Party shall:

(a) publish or otherwise make publicly available no later than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explanatory material regarding the requirements for temporary entry under this Chapter, in such a manner as will enable natural persons of the other Party to become acquainted with them; and

(b) establish or maintain appropriate mechanisms to respond to enquiries from interested persons regarding measures relating to the temporary entry of natural persons covered by this Chapter.

ARTICLE 10.8: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immigration formalities means a visa, permit or any other document or electronic authority granting a natural person of a Party temporary entry to the other Party;

natural person of a Party means a natural person who under the law of the Party:

(a) for Korea, is a national or a permanent resident of Korea; and

(b) for Australia, is a citizen or a permanent resident of Australia; and

Temporary entry means entry by a natural person covered by this Chapter, without the intent to establish permanent residence.

ANNEX 10-A
SPECIFIC COMMITMENTS ON THE MOVEMENT OF NATURAL PERSONS

Section A: Korea's Specific Commitments

1. Korea requires a business person of Australia seeking temporary entry into its territory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nd this Annex to obtain appropriate immigration formalities prior to entry.

2. Korea may refuse to grant temporary entry to a natural person who is likely to be involved in any labour dispute that is in progress and adversely affect the settlement of such labour dispute.

Business Visitors of Australia

3. Entry and temporary stay shall be granted to a business visitor of Australia for a period of not more than 90 days without requiring that person to obtain an employment authorisation, provided that the business visitor otherwise complies with immigration measures applicable to temporary entry.

4. A business visitor of Australia means a natural person of Australia:

(a) who is:

(i) a service seller who enters the territory of Korea for the purpose of negotiating the sale of services or entering into agreements for such sale;

(ii) seeking temporary entry for negotiating sale of goods, where such negotiations do not involve direct sales to the general public; or

(iii) an investor or an employee of an investor, who is a manager, executive or specialist as defined in paragraph 6, seeking temporary entry to establish an investment; and

(b) whose primary source of remuneration for the proposed business activity,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nd the actual place of accrual of profits, at least predominantly, remain outside Korea.

Intra-Corporate Transferees of Australia

5. Entry and temporary stay shall be granted for a period of up to three years, which may be extended for subsequent periods provided the conditions on which it is based remain in effect, to an intra-corporate transferee of Australia, provided that such person otherwise complies with immigration measures applicable to temporary entry.

6. Intra-corporate transferee means an employee of enterprises that supply services through subsidiaries, branches, or designated affiliates established in the territory of Korea and who has been so employed for a period not less than one year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the application for temporary entry, and who is an executive, manager, or specialist as defined below:

(a) executive means a natural person within an organisation who primarily directs the management of the organisation, exercises wide latitude in decision-making, and receives general supervision or direction from higher-level executives, the board of directors, or stockholders of the business. An executive would not directly perform tasks related to the actual supply of a service or services of the organisation;

(b) manager means a natural person within an organisation who primarily directs the organisation or a department of the organisation; supervises and controls the work of other supervisory, professional or managerial employees; has the authority to hire and fire or recommend hiring, firing, or other personnel actions; and exercises discretionary authority over day-to-day operations. This does not include a first-line supervisor, unless the employees supervised are professionals, nor does this include an employee who primarily performs tasks necessary for the supply of the service; and

(c) specialist means a natural person within an organisation who possesses knowledge at an advanced level of continued expertise and proprietary knowledge on the services, research, equipment, techniques, or management of the organisation.

Traders and Investors of Australia

7. Entry and temporary stay shall be granted for a period of up to two years, which may be extended for subsequent periods provided that the conditions on which it is based remain in effect, to a business person of Australia seeking to:

(a) carry on substantial trade in goods or services principally between Korea and Australia; or

(b) establish, develop or administer an investment or provide advice or key technical services to the operation of an investment to which that person or that person's enterprise has committed, or is in the process of committing, a substantial amount of capital,

in a capacity that is supervisory or executive, or involves essential skills, provided that such a person otherwise complies with immigration measures applicable to temporary entry.

Contractual Service Suppliers of Australia

8. Entry and temporary stay shall be granted for a period up to one year or the period of the contract, whichever is less, to a natural person of Australia who is seeking to provide services as a contractual service supplier in a profession as set out in Appendix 10-A-1, provided that such person otherwise complies with immigration measures applicable to temporary entry.

9. A contractual service supplier, means a natural person of Australia who:

(a) is employed or engaged in a specialised occupation that requires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specialised knowledge;

(b) possesses the necessary academic and professional qualifications and professionally-qualified competency-based experience to perform an activity in the sector relevant to the service to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regulations or requirements of Korea;

(c) is engaged in the supply of a contracted service as an employee of an enterprise that has no commercial presence in Korea, where the enterprise obtains a service

contract, for a period not exceeding one year, from an enterprise of Korea, who is final consumer of the services supplied. The contract shall comply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Korea;

(d) has been an employee of the enterprise for a period of not less than one year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application for admission; and

(e) is required to receive no remuneration from an enterprise located in Korea.

10. Labour market testing may be required as a condition for temporary entry of, or numerical restriction may be imposed relating to, temporary entry for professionals.

Accompanying Spouses and Dependents

11. Entry and temporary stay shall be granted for an equal period to a spouse or dependent of an intra-corporate transferee, trader, investor or contractual service supplier of Australia qualifying for temporary entry under this Chapter, provided that the spouse or dependent otherwise complies with immigration measures applicable to temporary entry. A work permit may be granted within the allowed scope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regulations or requirements of Korea.

Section B: Australia's Specific Commitments

1. Australia requires a natural person of Korea seeking temporary entry to its territory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nd this Annex to obtain appropriate immigration formalities prior to entry. Grant of temporary entry in accordance with this Annex is contingent on meeting eligibility requirements contained within Australia's migration law and regulations, as applicable at the time of an application for grant of temporary entry.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grant of temporary entr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5 through 11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employer nomination and occupation requirements.

Business Visitors of Korea

2. Entry and temporary stay shall be granted to business visitors of Korea referred to in paragraph 4(a) for a period of up to 90 days.

3. Entry and temporary stay shall be granted to business visitors of Korea referred to in paragraph 4(b) for a period of up to six months, with the possibility of further stay.

4. A business visitor of Korea means a natural person of Korea who is:

(a) a natural person seeking to travel to Australia for business purposes, including for investment purposes, whose remuneration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duration of the visit must be derived from sources outside Australia, and who must not engage in making direct sales to the general public or in supplying goods or services themselves; or

(b) a service seller, who is a natural person not based in Australia whose remuneration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duration of the visit must be derived from sources outside Australia, and who is a sales representative of a service supplying enterprise, seeking temporary entry for the purpose of negotiating for the sale of services or entering into agreements to sell services for that service supplying enterprise.

Intra-Corporate Transferees of Korea

5. Entry and temporary stay shall be granted to intra-corporate transferees of Korea referred to in paragraph 7(a) for a period of up to four years, with the possibility of further stay.

6. Entry and temporary stay shall be granted to intra-corporate transferees of Korea referred to in paragraph 7(b) for a period of up to two years, with the possibility of further stay.

7. An intra-corporate transferee of Korea means an employee of an enterprise of Korea established in Australia through a branch, subsidiary or affiliate which is lawfully and actively operating in Australia, who is transferred to fill a position in the branch, subsidiary or affiliate of the enterprise in Australia, and who is:

(a) an executive or a senior manager, who is a natural person responsible for the entire or a substantial part of the operations of the enterprise in Australia, receiving general supervision or direction principally from higher-level executives, the board of directors or stockholders of the enterprise, including directing the enterprise or a department or subdivision of it; supervising and controlling the work of other supervisory, professional or managerial employees; and having the

authority to establish goals and policies of the department or subdivision of the enterprise; or

(b) a specialist, who is a natural person with advanced trade, technical or professional skills and experience who must be assessed as having the necessary qualifications, or alternative credentials accepted as meeting Australia's standards, for that occupation, and who must have been employed by the employer for not less than two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the application for temporary entry.

Independent Executives of Korea

8. Entry and temporary stay shall be granted to independent executives of Korea for a period of up to two years.

9. An independent executive of Korea means an executive of an enterprise headquartered in Korea who is establishing a branch or subsidiary of that enterprise in Australia, and who is a natural person that will be responsible for the entire or a substantial part of the enterprise's operations in Australia, receiving general supervision or direction principally from higher-level executives, the board of directors or stockholders of the enterprise, including directing the enterprise or a department or subdivision of it; supervising and controlling the work of other supervisory, professional or managerial employees; and having the authority to establish goals and policies of the department or subdivision of the enterprise.

Contractual Service Suppliers of Korea

10. Entry and temporary stay shall be granted to contractual service suppliers of Korea for a period of up to one year, with the possibility of further stay.

11. A contractual service supplier of Korea means a natural person of Korea who has trade, technical or professional skills and experience and who is assessed as having the necessary qualifications, skills and work experience accepted as meeting Australia's standards for their nominated occupation and is:

(a) an employee of an enterprise of Korea that has concluded a contract for the supply of a service within Australia and which does not have a commercial presence within Australia; or

(b) engaged by an enterprise lawfully and actively operating in Australia in order to supply a service under a contract within Australia.

Accompanying Spouses and Dependents

12. For a natural person of Korea who has been granted the right of entry and temporary stay under this Chapter for a period of longer than 12 months and who has a spouse or dependent, Australia shall, upon application, grant the accompanying spouse or dependent the right of entry and temporary stay, movement and work for an equal period to that of the natural person.

APPENDIX 10-A-1
LIST OF CONTRACTUAL SERVICE SUPPLIERS

1. Service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management or repair of industrial equipment or machinery, excluding construction and power generation equipment, for an enterprise in Korea which purchases the equipment or the machinery from an enterprise employing the natural person located in Australia;

2. Consultancy services related to technical knowledge or skill concerning the natural sciences applied to information technology, e-business, biotechnology, nanotechnology, digital electronics, or the environmental industry;

3. Consultancy services for foreign accounting standards and auditing, training of CPAs, transfer of auditing technolog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related to accounting, auditing and bookkeeping services, to a Korean accounting firm or office through a membership contract;

4. Architectural services subject to collaboration with architects registered under Korean law in the form of joint contracts;

5.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s; and

6. The following professional engineering services:

(a) consultancy service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f computer hardware;

(b) software R&D-based implementation services;

(c) data management services;

(d) data system services; and

(e) specialty engineering design services for automobiles.

CHAPTER 11
INVESTMENT

Section A: Investment

ARTICLE 11.1: SCOPE

1. This Chapter shall apply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relating to:

   (a)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b) covered investments; and

   (c) with respect to Article 11.9, all investments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2. For greater certainty, this Chapter shall not bind either Party in relation to any act or fact that took place or any situation that ceased to exist befor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11.2: RELATION TO OTHER CHAPTERS

1. In the event of any inconsistency between this Chapter and another Chapter, the other Chapter shall prevail to the extent of the inconsistency.

2. A requirement by a Party that a service supplier of the other Party post a bond or other form of financial security as a condition of the cross-border supply of a service does not of itself make this Chapter applicable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the Party relating to such cross-border supply of the service. This Chapter shall apply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the Party relating to the posted bond or financial security, to the extent that such bond or financial security is a covered investment.

3. This Chapter shall not apply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to the extent that they are covered by Chapter 8 (Financial Services).

ARTICLE 11.3: NATIONAL TREATMENT

1. Each Party shall accord to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ts own investors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and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2. Each Party shall accord to covered investments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of its own investors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and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investments.

3. The treatment to be accorded by a Party under paragraphs 1 and 2 means, with respect to a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e most favourable treatment accorded in like circumstances, by that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to investors, and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the Party of which it forms a part.

ARTICLE 11.4: MOST-FAVOURED-NATION TREATMENT[35]

1. Each Party shall accord to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nvestors of any non-Party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and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2. Each Party shall accord to covered investments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of investors of any non-Party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and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investments.

ARTICLE 11.5: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36]

1. Each Party shall accord to covered investments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of aliens, including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2. For greater certainty, paragraph 1 prescribes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of aliens as the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to be afforded to covered investments. The concepts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shall not require treatment in addition to or beyond that which is required by that standard, and shall not create additional substantive rights. The obligation in paragraph 1 to provide:

   (a)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includes the obligation not to deny justice in criminal, civil, or administrative adjudicatory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embodied in the principal legal systems of the world; and

   (b)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requires each Party to provide the level of police protection required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3. A determination that there has been a breach of an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or of a separate international agreement, shall not establish that there has been a breach of this Article.

ARTICLE 11.6: LOSSES AND COMPENSATION

1. Notwithstanding Article 11.12.5(b), each Party shall accord to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and to covered investments, with respect to measures it adopts or maintains relating to losses suffered by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owing to armed conflict or civil strife,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a) its own investors and their investments; or

   (b) investors of any non-Party and their investments.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if an investor of a Party, in the situ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uffers a los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resulting from:

---

[35] For greater certainty, the treatment referred to in this Article does not encompas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or mechanisms such as those included in Section B.

[36] Article 11.5 shall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Annex 11-A.

(a) requisitioning of its covered investment or part thereof by the latter's forces or authorities; or

(b) destruction of its covered investment or part thereof by the latter's forces or authorities, which was not required by the necessity of the situation,

the latter Party shall provide the investor with restitution, compensation, or both as appropriate, for such loss. In the event of providing both restitution and compensation, their combined value shall not exceed the loss suffered. Any compensation shall be prompt, adequate, and effective,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1.7.2, 11.7.3 and 11.7.4, *mutatis mutandis*.

3.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existing measures relating to subsidies or grants that would be inconsistent with Article 11.3 but for Article 11.12.5(b).

ARTICLE 11.7: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37]

1. Neither Party shall expropriate or nationalise a covered investment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measures equivalent to expropriation or nationalisation ("expropriation"), except:

(a) for a public purpose;

(b) in a non-discriminatory manner;

(c) on payment of prompt, adequate, and effective compensation; and

(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as embodied in the principal legal systems of the world.

2. The compens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c) shall:

(a) be paid without delay;

(b) be equivalent to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expropriated investment immediately before the expropriation took pla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ate of expropriation");

(c) not reflect any change in value occurring because the intended expropriation had become known earlier; and

(d) be fully realisable and freely transferable.

3. If the fair market value is denominated in a freely usable currency, the compens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c) shall be no less than the fair market value on the date of expropriation, plus interest at a commercially reasonable rate for that currency, accrued from the date of expropriation until the date of payment.

4. If the fair market value is denominated in a currency that is not freely usable, the compens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c), converted into the currency of payment at the market rate of exchange prevailing on the date of payment, shall be no less than:

(a) the fair market value on the date of expropriation, converted into a freely usable currency at the market rate of exchange prevailing on that date; plus

(b) interest, at a commercially reasonable rate for that freely usable currency, accrued from the date of expropriation until the date of payment.

5.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the issuance of compulsory licences granted in rela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TRIPS Agreement, or to the revocation, limitation, or cre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the extent that such issuance, revocation, limitation or creation is consistent with Chapter 13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ICLE 11.8: TRANSFERS[38]

1. Each Party shall permit all transfers relating to a covered investment to be made freely and without delay into and out of its territory. Such transfers include:

(a) contributions to capital, including the initial contribution;

(b) profits, dividends, capital gains and proceeds from the sale of all or any part of the covered investment or from the partial or complete liquidation of the covered investment;

(c) interest, royalty payments, management fees and technical assistance and other fees;

(d) payments made under a contract, including a loan agreement;

(e) payments made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1.6 and 11.7; and

(f) payments arising out of a dispute.

2. Each Party shall permit transfers relating to a covered investment to be made in a freely usable currency at the market rate of exchange prevailing at the time of transfer.

3. Each Party shall permit returns in kind relating to a covered investment to be made as authorised or specified in a written agreement between the Party and a covered investment or an investor of the other Party.

4.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2 and 3, a Party may prevent or delay a transfer or a return in kind through the equitable, non-discriminatory and good faith application of its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a) bankruptcy, insolvency 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creditors;

(b) issuing, trading or dealing in securities, futures, options, or derivatives;

(c) criminal or penal offences;

(d) financial reporting or record keeping of transfers when necessary to assist law enforcement or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or

(e) ensuring compliance with orders or judgments in 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37] This Article shall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Annexes 11-A and 11-B.

[38] For greater certainty, Annex 11-C shall apply to this Article.

ARTICLE 11.9: PERFORMANCE REQUIREMENTS

1. Neither Party shall, in connection with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or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an investment in its territory of an investor of a Party or of a non-Party, impose or enforce any requirement or enforce any commitment or undertaking[39]:

(a) to export a given level or percentage of goods or services;

(b) to achieve a given level or percentage of domestic content;

(c) to purchase, use or accord a preference to goods produced in its territory or to purchase goods from persons in its territory;

(d) to relate in any way the volume or value of imports to the volume or value of exports or to the amount of foreign exchange inflows associated with such investment;

(e) to restrict sales of goods or services in its territory that such investment produces or supplies by relating such sales in any way to the volume or value of its exports or foreign exchange earnings;

(f) to transfer a particular technology, a production process, or other proprietary knowledge to a person in its territory; or

(g) to supply exclusively from the territory of the Party the goods that such investment produces or the services that it supplies to a specific regional market or to the world market.

2. Neither Party shall condition the receipt or continued receipt of an advantage, in connection with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or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an investment in its territory of an investor of a Party or of a non-Party, on compliance with any requirement:

(a) to achieve a given level or percentage of domestic content;

(b) to purchase, use or accord a preference to goods produced in its territory, or to purchase goods from persons in its territory;

(c) to relate in any way the volume or value of imports to the volume or value of exports or to the amount of foreign exchange inflows associated with such investment; or

(d) to restrict sales of goods or services in its territory that such investment produces or supplies by relating such sales in any way to the volume or value of its exports or foreign exchange earnings.

3. Nothing in paragraph 2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conditioning the receipt or continued receipt of an advantage, in connection with an investment in its territory of an investor of a Party or of a non-Party, on compliance with a requirement to locate production, supply a service, train or employ workers, construct or expand particular facilities, or carry out research and development, in its territory[40].

4. Paragraph 1(f) shall not apply:

(a) when a Party authorises use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of the TRIPS Agreement, or to measures requiring the disclosure of proprietary information that fall within the scope of, and are consistent with, Article 39 of the TRIPS Agreement; or

(b) when the requirement is imposed or the commitment or undertaking is enforced by a court, administrative tribunal, or competition authority to remedy a practice determined after 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ss to be anticompetitive under the Party's competition laws[41].

5. Provided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n arbitrary or unjustifiable manner, or do not constitute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or investment, paragraphs 1(b), 1(c) and 1(f), and 2(a) and 2(b), shall not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including environmental measures:

(a) 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that are not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b)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or

(c) related to the conservation of living or non-living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6. Paragraphs 1(a), 1(b) and 1(c), and 2(a) and 2(b) shall not apply to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goods or services with respect to export promotion and foreign aid programs.

7. Paragraphs 1(b), 1(c), 1(f) and 1(g), and 2(a) and 2(b) shall not apply to government procurement.

8. Paragraphs 2(a) and 2(b) shall not apply to requirements imposed by an importing Party relating to the content of goods necessary to qualify for preferential tariffs or preferential quotas.

9. For greater certainty,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to any commitment, undertaking, or requirement other than those set out in those paragraphs.

10. This Article shall not preclude enforcement of any commitment, undertaking, or requirement between private parties, where a Party did not impose or require the commitment, undertaking, or requirement.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private parties include designated monopolies or state enterprises, where such entities are not exercising delegated government authority.

[39] For greater certainty, a condition for the receipt or continued receipt of an advantage referred to in paragraph 2 does not constitute a "commitment or undertaking"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40] For greater certainty, nothing in paragraph 1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in connection with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or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an investment of an investor of a Party or of a non-Party in its territory, from imposing or enforcing a requirement or enforcing a commitment or undertaking to locate production, supply a service, train or employ workers, construct or expand particular facilities, or carry out research and development, in its territory, provided that such activity is consistent with paragraph 1(f).

[41] The Parties recognise that a patent does not necessarily confer market power.

ARTICLE 11.10: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1. Neither Party shall require that an enterprise of that Party that is a covered investment appoint to senior management positions natural persons of any particular nationality.

2. A Party may require that a majority or less than a maj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any committee thereof, of an enterprise of that Party that is a covered investment, be of a particular nationality, or resident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provided that the requirement does not materially impair the ability of the investor to exercise control over its investment.

ARTICLE 11.11: DENIAL OF BENEFITS

1. A Party may deny the benefits of this Chapter to an investor of the other Party that is an enterprise of such other Party and to investments of that investor if persons of a non-Party own or control the enterprise and the denying Party adopts or maintains measures with respect to the non-Party or a person of the non-Party that prohibit transactions with the enterprise or that would be violated or circumvented if the benefits of this Chapter were accorded to the enterprise or to its investments.

2. A Party may deny the benefits of this Chapter to an investor of the other Party that is an enterprise of such other Party and to investments of that investor if the enterprise has no substantive business operation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and persons of a non-Party, or of the denying Party, own or control the enterprise. If, before denying the benefits of this Chapter, the denying Party knows that the enterprise has no substantive business operation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and that persons of a non-Party, or of the denying Party, own or control the enterprise, the denying Party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notify the other Party before denying the benefits. If the denying Party provides such notice, it shall consult with the other Party on request of the other Party.

ARTICLE 11.12: NON-CONFORMING MEASURES

1. Articles 11.3, 11.4, 11.9 and 11.10 shall not apply to:

(a) any existing non-conforming measure that is maintained by a Party at:

(i) the central level of government, as set out by that Party in its Schedule to Annex I;

(ii) a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as set out by that Party in its Schedule to Annex I; or

(iii) a local level of government;

(b) the continuation or prompt renewal of any non-conforming measur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or

(c) an amendment to any non-conforming measur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to the extent that the amendment does not decrease the conformity of the measure, as it existed immediately before the amendment, with Articles 11.3, 11.4, 11.9 and 11.10.

2. Articles 11.3, 11.4, 11.9 and 11.10 shall not apply to any measure that a Party adopts or maintains with respect to sectors, sub-sectors, or activities, as set out in its Schedule to Annex II.

3. Neither Party shall, under any measure adopted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covered by its Schedule to Annex II, require an investor of the other Party, by reason of its nationality, to sell or otherwise dispose of an investment existing at the time the measure becomes effective.

4. Articles 11.3 and 11.4 shall not apply to any measure that is an exception to, or derogation from, the obligations under Article 13.1.6 as specifically provided in that Article.

5. Articles 11.3, 11.4 and 11.10 shall not apply to:

(a) government procurement; or

(b) subsidies or grants provided by a Party, including government-supported loans, guarantees, and insurance.

ARTICLE 11.13: SPECIAL FORMALITIES AND INFORMATION REQUIREMENTS[42]

1. Nothing in Article 11.3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a measure that prescribes special formalities in connection with covered investments, such as a requirement that covered investments be legally constituted under its laws or regulations, provided that such formalities do not materially impair the protections afforded by the Party to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and covered investments in accordance with this Chapter.

2. Notwithstanding Articles 11.3 and 11.4, a Party may require an investor of the other Party or its covered investment to provide information concerning that investment solely for informational or statistical purposes. The Party shall protect any information that is confidential from any disclosure that would prejudice the competitive position of the investor or the covered investment. Nothing in this paragraph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otherwise obtaining or disclosing information in connection with the equitable and good faith application of its law.

ARTICLE 11.14: SUBROGATION

1. Where a Party or an agency authorised by a Party has granted an indemnity, a guarantee or a contract of insurance against non-commercial risks with regard to an investment by one of its investor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and when payment has been made under this indemnity, guarantee or contract of insurance by the former Party or the agency authorised by it, the latter Party shall recognise the rights of the former Party or the agency authorised by the former Party by virtue of the principle of subrogation to the rights of the investor.

2. Where a Party or an agency authorised by a Party has made a payment to its investor and has taken over rights and claims of the investor, that investor shall not, unless authorised to act on behalf of the Party or agency authorised by the Party making the payment, pursue those rights and claims against the other Party.

[42] For transparency purposes only, Annex 11-D sets out an illustrative list of Australian residency requirements. If Korea considers that any residency requirement applied by Australia,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listed in Annex 11-D, is likely to materially impair the protections afforded by Australia to investors or covered investments of Korea, the Parties, upon request of Korea, shall promptly enter into consultations and endeavour to arrive at a mutually satisfactory resolution of the matter.

Section B: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ARTICLE 11.15: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In the event of an investment dispute, the claimant and the respondent should initially seek to resolve the dispute through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which may include the use of non-binding, third party procedures.

ARTICLE 11.16: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1. In the event that a disputing party considers that an investment dispute cannot be settled by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a) the claimant, on its own behalf, may submit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a claim:

(i) that the respondent has breached:

(A) an obligation under Section A;

(B) an investment authorisation; or

(C) an investment agreement; and

(ii) that the claimant has incurred loss or damage by reason of, or arising out of, that breach; and

(b) the claimant,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the respondent that is a juridical person that the claimant owns or controls directly or indirectly, may submit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a claim:

(i) that the respondent has breached:

(A) an obligation under Section A;

(B) an investment authorisation; or

(C) an investment agreement; and

(ii) that the enterprise has incurred loss or damage by reason of, or arising out of, that breach,

provided that a claimant may submit pursuant to subparagraph (a)(i)(C) or (b)(i)(C) a claim for breach of an investment agreement only if the subject matter of the claim and the claimed damages directly relate to the covered investment that was established or acquired, or sought to be established or acquired, in reliance on the relevant investment agreement.

2. At least 90 days before submitting any claim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a claimant shall deliver to the respondent a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submit the claim to arbitration (notice of intent). The notice shall specify:

(a) the name and address of the claimant and, where a claim is submitted on behalf of an enterprise, the name, address and place of incorporation of the enterprise;

(b) for each claim, the provision of this Agreement, investment authorisation or investment agreement alleged to have been breached and any other relevant provisions;

(c) the legal and factual basis for each claim; and

(d) the relief sought and the approximate amount of damages claimed.

3. Provided that six months have elapsed since the events giving rise to the claim, a claimant may submit a claim referred to in paragraph 1:

(a) under the ICSID Convention and the ICSID Rules of Procedure for Arbitration Proceedings, provided that both the respondent and the non-disputing Party are parties to the ICSID Convention;

(b) under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provided that either the respondent or the non-disputing Party is a party to the ICSID Convention;

(c) under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or

(d) if the claimant and respondent agree, to any other arbitration institution or under any other arbitration rules.

4. A claim shall be deemed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when the claimant's notice of, or request for, arbitration (notice of arbitration):

(a)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Article 36 of the ICSID Convention is received by the Secretary-General;

(b) referred to in Article 2 of Schedule C of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is received by the Secretary-General;

(c) referred to in Article 3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together with the statement of claim referred to in Article 18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are received by the respondent; or

(d) referred to under any arbitral institution or arbitral rules selected under paragraph 3(d) is received by the respondent.

A claim asserted by the claimant for the first time after such notice of arbitration is submitted shall be deemed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on the date of its receipt under the applicable arbitral rules.

5. The arbitration rules applicable under paragraph 3, and in effect on the date the claim or claims were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shall govern the arbitration except to the extent modified by this Agreement.

6. The claimant shall provide with the notice of arbitration:

(a) the name of the arbitrator that the claimant appoints; or

(b) the claimant's written consent for the Secretary-General to appoint that arbitrator.

ARTICLE 11.17: CONSENT OF EACH PARTY TO ARBITRATION

1. Each Party consents to the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2. The consent under paragraph 1 and the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shall satisfy the requirements of:

(a) Chapter II (Jurisdiction of the Centre) of the ICSID Convention and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for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and

(b) Article II of the New York Convention for an "agreement in writing."

ARTICLE 11.18: CONDITIONS AND LIMITATIONS ON CONSENT OF EACH PARTY

1. No claim may be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if more than three years have elapsed from the date the claimant first acquired, or should have first acquired, knowledge of the breach alleged under Article 11.16.1 and knowledge that the claimant (for claims brought under Article 11.16.1(a)) or the enterprise (for claims brought under Article 11.16.1(b)) has incurred loss or damage.

2. No claim may be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unless:

(a) the claimant consents in writing to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out in this Agreement; and

(b) the notice of arbitration is accompanied:

(i) for claims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Article 11.16.1(a), by the claimant's written waiver; and

(ii) for claims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Article 11.16.1(b), by the claimant's and the enterprise's written waivers,

of any right to initiate or continue before any administrative tribunal or court under the law of either Party, or other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ny proceeding with respect to any measure alleged to constitute a breach referred to in Article 11.16.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b), the claimant (for claims brought under Article 11.16.1(a)) and the claimant or the enterprise (for claims brought under Article 11.16.1(b)) may initiate or continue an action that seeks interim injunctive relief and does not involve the payment of monetary damages before a judicial or administrative tribunal of the respondent, provided that the action is brought for the sole purpose of preserving the claimant's or the enterprise's rights and interests during the pendency of the arbitration.

ARTICLE 11.19: SELECTION OF ARBITRATORS

1. Unless the disputing parties otherwise agree, the tribunal shall comprise three arbitrators, one arbitrator appointed by each of the disputing parties and the third, who shall be the presiding arbitrator, appointed by agreement of the disputing parties.

2. The Secretary-General shall serve as appointing authority for an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3. If a tribunal has not been constituted within 75 days of the date a claim is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the Secretary-General, on request of a disputing party, shall appoint, in his or her discretion, the arbitrator or arbitrators not yet appointed. The Secretary-General shall not appoint a national of either Party as the presiding arbitrator unless the disputing parties otherwise agree.

4. For the purposes of Article 39 of the ICSID Convention and Article 7 of Schedule C to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and without prejudice to an objection to an arbitrator on a ground other than nationality:

(a) the respondent agrees to the appointment of each individual member of a tribunal established under the ICSID Convention or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b) a claimant referred to in Article 11.16.1(a) may submit a claim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or continue a claim, under the ICSID Convention or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only on condition that the claimant agrees in writing to the appointment of each individual member of the tribunal; and

(c) a claimant referred to in Article 11.16.1(b) may submit a claim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or continue a claim, under the ICSID Convention or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only on condition that the claimant and the enterprise agree in writing to the appointment of each individual member of the tribunal.

ARTICLE 11.20: CONDUCT OF THE ARBITRATION

1. The disputing parties may agree on the legal place of any arbitration under the arbitral rules applicable under Article 11.16.3. If the disputing parties fail to reach agreement, the tribunal shall determine the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arbitral rules, provided that the place shall be in the territory of a State that is a party to the New York Convention.

2. At the request of a disputing party, and unless the disputing parties otherwise agree, the tribunal may determine the place of meetings, including consultations and hearings, taking into consideration appropriate factors, including the convenience of the parties and the arbitrators, the location of the subject matter, and the proximity of evidence. The preceding sentence is without prejudice to any appropriate factors a tribunal may consider under paragraph 1.

3. Unless the disputing parties otherwise agree, English and Korean shall be the official languages to be used in the entire arbitration proceedings, including all hearings, submissions, decisions, and awards.

4. The non-disputing Party may make oral and written submissions to the tribunal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is Agreement. On request of a disputing party, the non-disputing Party should resubmit its oral submission in writing.

5. After consulting the disputing parties, the tribunal may allow a party or entity that is not a disputing party to file a written *amicus curiae* submission with the tribunal regarding a matter within the scope of the dispute. In determining whether to allow such a filing, the tribunal shall consider, among other things, the extent to which:

(a) the *amicus curiae* submission would assist the tribunal in the determination of a factual or legal issue related to the proceeding by bringing a perspective, particular knowledge, or insight that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disputing parties;

(b) the *amicus curiae* submission would address a matter within the scope of the dispute; and

(c) the *amicus curiae* has a significant interest in the proceeding.

The tribunal shall ensure that the *amicus curiae* submission does not disrupt the proceeding or unduly burden or unfairly prejudice either disputing party, and that the disputing parties are given an opportunity to present their observations on the *amicus curiae* submission.

6. Without prejudice to a tribunal's authority to address other objections as a preliminary question, a tribunal shall address and decide as a preliminary question any objection by the respondent that, as a matter of law, a claim submitted is not a claim for which an award in favour of the claimant may be made under Article 11.26:

(a) such objection shall be submitted to the tribunal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tribunal is constituted, and in no event later than the date the tribunal fixes for the respondent to submit its counter-memorial or, in the case of an amendment to the notice of arbitration, the date the tribunal fixes for the respondent to submit its response to the amendment;

(b) on receipt of an objection under this paragraph, the tribunal shall suspend any proceedings on the merits, establish a schedule for considering the objection consistent with any schedule it has established for considering any other preliminary question, and issue a decision or award on the objection, stating the grounds therefor;

(c) in deciding an objection under this paragraph, the tribunal shall assume to be true the claimant's factual allegations in support of any claim in the notice of arbitration (or any amendment thereof) and, in disputes brought under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e statement of claim referred to in Article 18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e tribunal may also consider any relevant facts not in dispute;

(d) the respondent does not waive any objection as to competence or any argument on the merits merely because the respondent did or did not raise an objection under this paragraph or make use of the expedited procedure set out in paragraph 7.

7. In the event that the respondent so requests within 45 days of the date the tribunal is constituted, the tribunal shall decide on an expedited basis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6 and any objection that the dispute is not within the tribunal's competence. The tribunal shall suspend any proceedings on the merits and issue a decision or award on the objection(s), stating the grounds therefor, no later than 150 days after the date of the request. However, if a disputing party requests a hearing, the tribunal may take an additional 30 days to issue the decision or award. Regardless of whether a hearing is requested, a tribunal may, on a showing of extraordinary cause, delay issuing its decision or award by an additional brief period, which may not exceed 30 days.

8. When it decides a respondent's objection under paragraph 6 or 7, the tribunal may, if warranted, award to the prevailing disputing party reasonable costs and attorney's fees incurred in submitting or opposing the objection. In determining whether such an award is warranted, the tribunal shall consider whether either the claimant's claim or the respondent's objection was frivolous, and shall provide the disputing parties a reasonable opportunity to comment.

9. A respondent may not assert as a defence, counterclaim, or right of set-off, or for any other reason, that the claimant has received or will receive indemnification or other compensation for all or part of the alleged damages pursuant to an insurance or guarantee contract, except with respect to any subrogation as provided for in Article 11.14.

10. A tribunal may order an interim measure of protection to preserve the rights of a disputing party, or to ensure that the tribunal's jurisdiction is made fully effective, including an order to preserve evidence in the possession or control of a disputing party or to protect the tribunal's jurisdiction. A tribunal may not order attachment or enjoin the application of a measure alleged to constitute a breach referred to in Article 11.16.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an order includes a recommendation.

11. In any arbitration conducted under this Section, on request of a disputing party, a tribunal shall, before issuing a decision or award on liability, transmit its proposed decision or award to the disputing parties and to the non-disputing Party. Within 60 days after the date the tribunal transmits its proposed decision or award, the disputing parties may submit written comments to the tribunal concerning any aspect of its proposed decision or award. The tribunal shall consider any such comments and issue its decision or award not later than 45 days after the date the 60 day comment period expires.

12. Paragraph 11 shall not apply in any arbitration conducted pursuant to this Section for which an appeal has been made available pursuant to paragraph 13 or Annex 11-E.

13. If a separate, multilateral agreement enters into force between the Parties that establishes an appellate body for the purposes of reviewing awards rendered by tribunals constituted pursuant to international trade or investment arrangements to hear investment disputes, the Parties shall strive to reach an agreement that would have such appellate body review awards rendered under Article 11.26 in arbitrations commenced after the multilateral agreement enters into force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1.21: TRANSPARENCY OF ARBITRAL PROCEEDINGS

1. Subject to paragraphs 2, 3 and 4, the respondent shall, after receiving the following documents, promptly transmit them to the non-disputing Party and make them available to the public:

(a) the notice of intent;

(b) the notice of arbitration;

(c) pleadings, memorials and briefs submitted to the tribunal by a disputing party and any written submissions submitted pursuant to Article 11.20.4 and 11.20.5 and Article 11.25;

(d) minutes or transcripts of hearings of the tribunal, where available; and

(e) orders, awards, and decisions of the tribunal.

2. The tribunal shall conduct hearings open to the public and shall determine, in consultation with the disputing parties, the appropriate logistical arrangements. However, any disputing party that intends to use information designated as protected information in a hearing shall so advise the tribunal. The tribunal shall make appropriate arrangements to protect the information from disclosure.

3.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22.2 (Essential Security) and Article 22.4 (Disclosure of Information), nothing in this Section requires a Party to furnish or allow access to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a) would impede law enforcement;

(b) would be contrary to its law regarding treatment of official information or matters relating to personal privacy; or

(c) it considers to be contrary to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4. Any protected information that is submitted to the tribunal shall be protected from disclosure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subject to subparagraph (d), neither the disputing parties nor the tribunal shall disclose to the non-disputing Party or to the public any protected information where the disputing party that provided the information clearly designates it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b);

(b) any disputing party claiming that certain information constitutes protected information shall clearly designate the information at the time it is submitted to the tribunal;

(c) a disputing party shall, at the time it submits a document containing information claimed to be protected information, submit a redacted version of the document that does not contain the information. Only the redacted version shall be provided to the non-disputing Party and made public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d) the tribunal shall decide any objection by a disputing party regarding the designation of information claimed to be protected information. If the tribunal determines that such information was not properly designated, the disputing party that submitted the information may:

(i) withdraw all or part of its submission containing such information; or

(ii) agree to resubmit complete and redacted documents with corrected design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tribunal's determination and subparagraph (c),

in either case, the other disputing party shall, whenever necessary, resubmit complete and redacted documents which either remove the information withdrawn under subparagraph (d)(i) by the disputing party that first submitted the information or redesignate the information consistent with the designation under subparagraph (d)(ii) of the disputing party that first submitted the information; and

(e) on request of a disputing Party, the Joint Committee shall consider issuing a decision in writing regarding a determination by the tribunal that information claimed to be protected was not properly designated. If the Joint Committee issues a decision within 60 days of such a request, it shall be binding on the tribunal, and any decision or award issued by the tribunal must be consistent with that decision. If the Joint Committee does not issue a decision within 60 days, the tribunal's determination shall remain in effect only if the non-disputing Party submits a written statement to the Joint Committee within that period that it agrees with the tribunal's determination.

5. Nothing in this Section requires a respondent to withhold from the public information required to be disclosed by its laws.

ARTICLE 11.22: GOVERNING LAW

1. Subject to paragraph 3, when a claim is submitted under Article 11.16.1(a)(i)(A) or Article 11.16.1(b)(i)(A), the tribunal shall decide the issues in dispute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and applicable rules of international law.

2. Subject to paragraph 3 and the other terms of this Section, when a claim is submitted under Article 11.16.1(a)(i)(B) or 11.16.1(a)(i)(C), or Article 11.16.1(b)(i)(B) or 11.16.1(a)(i)(C), the tribunal shall apply:

(a) the rules of law specified in the pertinent investment authorisation or investment agreement, or as the disputing parties may otherwise agree; or

(b) if the rules of law have not been specified or otherwise agreed:

(i) the law of the respondent, including its rules on the conflict of laws[43]; and

(ii) such rules of international law as may be applicable.

3. A decision of the Joint Committee declaring its interpretation of a provision of this Agreement under Article 21.3.3(c) shall be binding on a tribunal, and any decision or award issued by a tribunal must be consistent with that decision.

ARTICLE 11.23: INTERPRETATION OF ANNEXES

1. Where a respondent asserts as a defence that the measure alleged to be a breach is within the scope of an entry set out in Annex I or Annex II, the tribunal shall, on request of the respondent, request the interpretation of the Joint Committee on the issue. The Joint Committee shall submit in writing any decision declaring its interpretation under Article 21.3.3(c) to the tribunal within 60 days of delivery of the request.

2. A decision issued by the Joint Committee under paragraph 1 shall be binding on the tribunal, and any decision or award issued by the tribunal must be consistent with that decision. If the Joint Committee fails to issue such a decision within 60 days, the tribunal shall decide the issue.

ARTICLE 11.24: EXPERT REPORTS

Without prejudice to the appointment of other kinds of experts where authorized by the applicable arbitration rules, a tribunal, on request of a disputing party or, unless the disputing parties disapprove, on its own initiative, may appoint one or more experts to report to it in writing on any factual issue concerning environmental, health, safety or other scientific matters raised by a disputing party in a proceeding, subject to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disputing parties may agree.

ARTICLE 11.25: CONSOLIDATION

1. Where two or more claims have been submitted separately to arbitration under Article 11.16.1 and the claims have a question of law or fact in common and arise out of the same events or circumstances, any disputing party may seek a consolidation order in accordance with the

[43] For the purposes of this subparagraph, the "law of the respondent" means the law that a domestic court or tribunal of proper jurisdiction would apply in the same case.

agreement of all the disputing parties sought to be covered by the order or the terms of paragraphs 2 through 10.

2. A disputing party that seeks a consolidation order under this Article shall deliver, in writing, a request to the Secretary-General and to all the disputing parties sought to be covered by the order and shall specify in the request:

(a) the names and addresses of all the disputing parties sought to be covered by the order;

(b) the nature of the order sought; and

(c) the grounds on which the order is sought.

3. Unless the Secretary-General finds within 30 days after receiving a request under paragraph 2 that the request is manifestly unfounded, a tribunal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is Article.

4. Unless all the disputing parties sought to be covered by the order otherwise agree, a tribunal established under this Article shall comprise three arbitrators:

(a) one arbitrator appointed by agreement of the claimants;

(b) one arbitrator appointed by the respondent; and

(c) the presiding arbitrator appointed by the Secretary-General, provided, however, that the presiding arbitrator shall not be a national of either Party.

5. If, within 60 days after the Secretary-General receives a request made under paragraph 2, the respondent fails or the claimants fail to appoint an arbitrato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the Secretary-General, on request of any disputing party sought to be covered by the order, shall appoint the arbitrator or arbitrators not yet appointed. If the respondent fails to appoint an arbitrator, the Secretary-General shall appoint a national of the disputing Party, and if the claimants fail to appoint an arbitrator, the Secretary-General shall appoint a national of the non-disputing Party.

6. Where a tribunal established under this Article is satisfied that two or more claims that have been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Article 11.16.1 have a question of law or fact in common, and arise out of the same events or circumstances, the tribunal may, in the interest of fair and efficient resolution of the claims, and after hearing the disputing parties, by order:

(a) assume jurisdiction over, and hear and determine together, all or part of the claims;

(b) assume jurisdiction over, and hear and determine one or more of the claims, the determination of which it believes would assist in the resolution of the others; or

(c) instruct a tribunal previously established under Article 11.19 to assume jurisdiction over, and hear and determine together, all or part of the claims, provided that:

(i) that tribunal, on request of any claimant not previously a disputing party before that tribunal, shall be reconstituted with its original members, except that the arbitrator for the claimants shall be appointed pursuant to paragraphs 4(a) and 5; and

(ii) that tribunal shall decide whether any prior hearing shall be repeated.

7. Where a tribunal has been established under this Article, a claimant that has submitted a claim to arbitration under Article 11.16.1 and that has not been named in a request made under paragraph 2 may make a written request to the tribunal that it be included in any order made under paragraph 6, and shall specify in the request:

(a) the name and address of the claimant;

(b) the nature of the order sought; and

(c) the grounds on which the order is sought.

The claimant shall deliver a copy of its request to the Secretary-General.

8. A tribunal established under this Article shall conduct its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except as modified by this Section.

9. A tribunal established under Article 11.19 shall not have jurisdiction to decide a claim, or a part of a claim, over which a tribunal established or instructed under this Article has assumed jurisdiction.

10. On application of a disputing party, a tribunal established under this Article, pending its decision under paragraph 6, may order that the proceedings of a tribunal established under Article 11.19 be stayed, unless the latter tribunal has already adjourned its proceedings.

ARTICLE 11.26: AWARDS

1. Where a tribunal makes a final award against a respondent, the tribunal may award, separately or in combination, only:

(a) monetary damages and any applicable interest; and

(b) restitution of property, in which case the award shall provide that the respondent may pay monetary damages and any applicable interest in lieu of restitution.

2. A tribunal may also award costs and attorney's fees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and the applicable arbitration rules.

3. Subject to paragraph 1, where a claim is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Article 11.16.1(b):

(a) an award of restitution of property shall provide that restitution be made to the enterprise;

(b) an award of monetary damages and any applicable interest shall provide that the sum be paid to the enterprise; and

(c) the award shall provide that it is made without prejudice to any right that any person may have in the relief under applicable domestic law.

4. A tribunal may not award punitive damages.

5. An award made by a tribunal shall have no binding force except between the disputing parties and in respect of the particular case.

6. Subject to paragraph 7 and the applicable review procedure for an interim award, a disputing party shall abide by and comply with an award without delay.

7. A disputing party may not seek enforcement of a final award until:

(a) in the case of a final award made under the ICSID Convention:

(i) 120 days have elapsed from the date the award was rendered and no disputing party has requested revision or annulment of the award; or

(ii) revision or annulment proceedings have been completed; and

(b) in the case of a final award under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or the rules selected pursuant to Article 11.16.3(d):

(i) 90 days have elapsed from the date the award was rendered and no disputing party has commenced a proceeding to revise, set aside, or annul the award; or

(ii) a court has dismissed or allowed an application to revise, set aside, or annul the award and there is no further appeal.

8.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the enforcement of an award in its territory.

9. If the respondent fails to abide by or comply with a final award, on delivery of a request by the non-disputing Party, a panel shall be established under Article 20.8 (Establishment of Panel). The requesting Party may seek in such proceedings:

(a) a determination that the failure to abide by or comply with the final award is inconsistent with the obligations of this Agreement; and

(b) in accordance with Article 20.11 (Panel Report), a recommendation that the respondent abide by or comply with the final award.

10. A disputing party may seek enforcement of an arbitration award under the ICSID Convention or the New York Convention regardless of whether proceedings have been taken under paragraph 9.

11. A claim that is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shall be considered to arise out of a commercial relationship or transaction for the purposes of Article I of the New York Convention.

ARTICLE 11.27: SERVICE OF DOCUMENTS

Delivery of notice and other documents on a Party shall be made to the place named for that Party in Annex 11-H.

Section C: Definitions

ARTICLE 11.28: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Centre means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established by the ICSID Convention;

claimant means an investor of a Party that is a party to an investment dispute with the other Party;

disputing parties means the claimant and the respondent;

disputing Party means a Party against which a claim is made under Section B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enterprise means an enterprise as defined in Article 1.4 (Definitions), and a branch of an enterprise;

enterprise of a Party means an enterprise constituted or organised under the law of a Party, and a branch of an enterprise of a Party locat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and carrying out business activities ther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means the *Rules Governing the Additional Facility for the Administration of Proceedings by the Secretariat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Convention means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done at Washington, 18 March 1965*;

Investment means every asset that an investor owns or controls, directly or indirectly, tha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n investment, including such characteristics as the commitment of capital or other resources, the expectation of gain or profit, or the assumption of risk. Forms that an investment may take include:

(a) an enterprise;

(b) shares, stock and other forms of equity participation in an enterprise;

(c) bonds, debentures, other debt instruments and loans[44];

(d) futures, options and other derivatives;

(e) turnkey, construction, management, production, concession, revenue-sharing and other similar contracts;

(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 licences, authorisations, permits and similar rights conferred pursuant to domestic law[45,46]; and

[44] Some forms of debt, such as bonds, debentures, and long-term notes, are more likely to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n investment, while other forms of debt are less likely to have such characteristics.

(h) other tangible or intangible,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and related property rights, such as leases, mortgages, liens and pledges[47].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 claim to payment that arises solely from the commercial sale of goods and services is not an investment, unless it is a loan tha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n investment;

investment agreement means a written agreement[48] between a national authority[49] of a Party and a covered investment or an investor of the other Party, on which the covered investment or the investor relies in establishing or acquiring a covered investment other than the written agreement itself, that grants rights to the covered investment or investor:

(a) with respect to natural resources that a national authority controls, such as for their exploration, extraction, refining, transportation, distribution or sale;

(b) to supply services to the public on behalf of the Party, such as power generation or distribution, water treatment or distribution, or telecommunications; or

(c) to undertake infrastructure project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roads, bridges, canals, dams, or pipelines, that are not for the exclusive or predominant use and benefit of the government;

Investment authorisation means an authorisation that the foreign investment authority of a Party grants to a covered investment or an investor of the other Party[50,51];

[45] Whether a particular type of licence, authorisation, permit or similar instrument (including a concession, to the extent that it has the nature of such an instrumen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n investment depends on such factors as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rights that the holder has under the law of the Party. Among the licences, authorisations, permits and similar instruments that do not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n investment are those that do not create any rights protected under domestic law. For greater certainty, the foregoing is without prejudice to whether any asset associated with the licence, authorisation, permit or similar instrumen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n investment.

[46] The term "investment" does not include an order or judgment entered in a judicial or administrative action.

[47] For greater certainty, market share, market access, expected gains and opportunities for profit-making are not, by themselves, investments.

[48] "Written agreement" means an agreement in writing, executed by both parties, whether in a single instrument or in multiple instruments, that creates an exchange of rights and obligations, binding on both parties. For greater certainty:

(a) a unilateral act of an administrative or judicial authority, such as a permit, licence, or authorisation issued by a Party solely in its regulatory capacity, or a decree, order, or judgment, standing alone; and

(b) an administrative or judicial consent decree or order,

shall not be considered a written agreement.

[49] For the purposes of this definition, "national authority" means an authority at the central level of government.

[50] For greater certainty, actions taken by a Party to enforce laws of general application, such as competition laws, are not encompassed within this definition.

[51] For greater certainty, decisions made by the Treasurer under Australia's foreign investment policy, including the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 are not encompassed within this definition. For Korea, the Parties recognise that, as of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Agreement, Korea has no foreign investment authority that grants investment authorisation.

investor of a non-Party means, with respect to a Party, an investor that attempts to make, is making, or has made an investment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that is not an investor of either Party;

investor of a Party means a Party or state enterprise thereof, or a national or an enterprise of a Party, that attempts to make, is making or has made an investmen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provided, however, that a national who is a dual national shall be deemed to be exclusively a national of the State of his or her dominant and effective nationality;

New York Convention mean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done at New York, 10 June 1958;

non-disputing Party means the Party that is not a party to an investment dispute;

protected information means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or information that is privileged or otherwise protected from disclosure under a Party's law;

respondent means the Party that is a party to an investment dispute;

Secretary-General means the Secretary-General of ICSID; and

UNCITRAL Arbitration Rules means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ANNEX 11-A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Parties confirm their shared understanding that "customary international law" generally and as specifically referenced in Article 11.5 results from a general and consistent practice of States that they follow from a sense of legal obligation. With regard to Article 11.5,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of aliens refers to all customary international law principles that protect the economic rights and interests of aliens.

ANNEX 11-B
EXPROPRIATION

The Parties confirm their shared understanding that:

1. An action or a series of actions by a Party cannot constitute an expropriation unless it interferes with a tangible or intangible property right in an investment.

2. Article 11.7.1 addresses two situations. The first is direct expropriation, where an investment is nationalised or otherwise directly expropriated through formal transfer of title or outright seizure.

3. The second situation addressed by Article 11.7.1 is indirect expropriation, where an action or a series of actions by a Party has an effect equivalent to direct expropriation without formal transfer of title or outright seizure.

4.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an action or a series of actions by a Party, in a specific fact situation, constitutes an indirect expropriation, requires a case-by-case, fact-based inquiry that considers all relevant factors relating to the investment, including:

   (a) the economic impact of the government action, although the fact that an action or a series of actions by a Party has an adverse effect on the economic value of an investment, standing alone, does not establish that an indirect expropriation has occurred;

   (b) the extent to which the government action interferes with distinct, reasonable investment-backed expectations[52]; and

   (c) the character of the government action, including its objectives and context[53].

5. Except in rare circumstances, non-discriminatory regulatory actions by a Party that are designed and applied to protect legitimate public welfare objectives, such as public health, safety, and the environment, do not constitute indirect expropriations[54,55,56].

---

[52] For greater certainty, whether an investor's investment-backed expectations are reasonable may include consideration of the nature and extent of governmental regulation in the relevant sector.

[53] For Korea, a relevant consideration could include whether the investor bears a disproportionate burden such as a special sacrifice that exceeds what the investor or investment should be expected to endure for the public interest.

[54] For greater certainty, the list of "legitimate public welfare objectives" in paragraph 5 is not exhaustive.

[55] For greater certainty and without limiting the scope of paragraph 5, such regulatory actions to protect public health include regulation, supply and reimbursement with respect to pharmaceuticals, diagnostics, vaccines, medical devices, health-related aids and appliances and blood and blood products.

[56] For Korea, real estate price stabilisation (through, for example, measures to improve the housing conditions for low-income households), does not constitute indirect expropriation.

ANNEX 11-C
TRANSFERS

1.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temporary safeguard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arty with regard to payments and capital movements:

   (a) in the event of serious balance-of-payments or external financial difficulties or threat thereof; or

   (b) wher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payments and capital movements between the Parties cause or threaten to cause serious difficulties for the operation of monetary policy or exchange rate policy in the Party concerned.

2. The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 shall not exceed a period of one year, however, if extremely exceptional circumstances arise such that a Party seeks to extend such measures, the Party will coordinate in advance with the other Party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any proposed extension;

   (b)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Articles of Agree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c) shall avoid unnecessary damage to the commercial, economic and financial interests of the other Party;

   (d) shall not exceed those necessary to deal with the circumstances described in paragraph 1;

   (e) shall be temporary and phased out progressively as the situation described in paragraph 1 improves;

   (f) shall not be confiscatory;

   (g) shall promptly be notified to the other Party;

   (h) shall be applied on a national treatment basis;

   (i) shall ensure that the other Party is treated as favourably as any non-Party;

   (j) shall not constitute a dual or multiple exchange rate practice;

   (k) shall not restrict payments or transfers for current transactions, unless the imposition of such measures complies with the procedures stipulated in the Articles of Agree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l) shall not restrict payments or transfers associated with foreign direct investment.

ANNEX 11-D
ILLUSTRATIVE LIST OF AUSTRALIAN RESIDENCY REQUIREMENTS[57]

Sector	Requirement
All	At least two of the directors of a public company must be ordinarily resident in Australia.
Professional services: Accounting, auditing and book-keeping services	At least one equity partner in a firm must be a permanent resident.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R&D services on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Permanent residency requirement for psychologists (Western Australia).
Maritime transport services: International transport (freight and passengers)	Part X of the *Competition and Consumer Law 2010* requires that every ocean carrier who provides international liner cargo shipping services to or from Australia shall, at all times be represented by a person who is an individual resident in Australia (but not necessarily an Australian citizen) and has been appointed by the ocean carrier as the ocean carrier's agent for the purposes of Part X.

[57] This table is provided for transparency purposes only.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table is drawn from Australian commitments under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and Australia's May 2005 Revised Services Offer under the WTO Doha Development Agenda negotiations.

ANNEX 11-E
POSSIBILITY OF A BILATERAL APPELLATE MECHANISM

Within three year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consider whether to establish a bilateral appellate body or similar mechanism to review awards rendered under Article 11.26 in arbitrations commenced after they establish the appellate body or similar mechanism.

ANNEX 11-F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Korea

1. Notwithstanding Article 11.18.2, an investor of Australia may not submit to arbitration under Section B a claim that Korea has breached an obligation under Section A either:

(a) on its own behalf, under Article 11.16.1(a); or

(b)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Korea that is a juridical person that the investor owns or controls directly or indirectly, under Article 11.16.1(b),

if the investor or the enterprise, respectively, has alleged that breach of an obligation under Section A in any proceedings before a court or administrative tribunal of Korea.

2. For greater certainty, where an investor of Australia or an enterprise of Korea that is a juridical person that the investor owns or controls directly or indirectly makes an allegation that Korea has breached an obligation under Section A before a court or administrative tribunal of Korea, that election shall be final, and the investor may not thereafter allege that breach, on its own behalf or on behalf of the enterprise, in an arbitration under Section B.

ANNEX 11-G
FOREIGN INVESTMENT POLICY

A decision by Australia with respect to whether or not to refuse, or impose orders or conditions on, an investment that is subject to review under Australia's foreign investment policy shall not be subject to the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of Section B.

ANNEX 11-H
SERVICE OF DOCUMENTS ON A PARTY UNDER SECTION B

Korea

Notices and other documents in disputes under Section B shall be served on Korea by delivery to:

Office of International Legal Affairs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Complex, Gwacheon
Korea

Australia

Notices and other documents in disputes under Section B shall be served on Australia by delivery to: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RG Casey Building
John McEwen Crescent
Barton ACT 0221 Australia

ANNEX 11-I
TAXATION AND EXPROPRIATION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a taxation measure, in a specific fact situation, constitutes an expropriation requires a case-by-case, fact-based inquiry that considers all relevant factors relating to the investment, including the factors listed in Annex 11-B and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a) the imposition of taxes does not generally constitute an expropriation. The mere introduction of a new taxation measure, or the imposition of a taxation measure by more than one jurisdiction within a Party in respect of an investment, generally does not in and of itself constitute an expropriation;

(b) a taxation measure that i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ly recognised tax policies, principles, and practices should not constitute an expropriation. In particular, a taxation measure aimed at preventing the avoidance or evasion of taxation measures generally does not constitute an expropriation;

(c) a taxation measure that is applied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as opposed to a taxation measure that is targeted at investors of a particular nationality or at specific taxpayers, is less likely to constitute an expropriation; and

(d) a taxation measure generally does not constitute an expropriation if it was already in force when the investment was made and information about the measure was publicly available.

8 April 2014

The Hon Andrew Robb AO, MP
Minister for Trade and Investment
Parliament House
CANBERRA ACT 2600

Dear Minister Robb

In connection with the signing on this date of the Kore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the "Agreement"), I have the honour to confirm the following understandings reached between the deleg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ustralia during the course of negotiations regarding Chapter 11 (Investment) of the Agreement:

> The Parties shall enter into consultations within 12 month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on the future appl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UN Doc A/CN.9/783) (the "UNCITRAL Transparency Rules") to arbitrations initiated pursuant to Section B of Chapter 11 (Investment).
>
>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the UNCITRAL Transparency Rules shall not apply to arbitrations initiated pursuant to Section B of Chapter 11 (Investment).

I have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is letter and your letter in reply confirming that your Government shares these understandings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Yours sincerely

Yoon Sang-jick

8 April 2014

Mr Yoon Sang-jick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Seoul, Republic of Korea

Dear Minister Yoon

I have the honour to acknowledge receipt of your letter of this date, which reads as follows:

> In connection with the signing on this date of the Kore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the "Agreement"), I have the honour to confirm the following understandings reached between the deleg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ustralia during the course of negotiations regarding Chapter 11 (Investment) of the Agreement:
>
> > The Parties shall enter into consultations within 12 month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on the future appl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UN Doc A/CN.9/783) (the "UNCITRAL Transparency Rules") to arbitrations initiated pursuant to Section B of Chapter 11 (Investment).
> >
> >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the UNCITRAL Transparency Rules shall not apply to arbitrations initiated pursuant to Section B of Chapter 11 (Investment).
>
> I have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is letter and your letter in reply confirming that your Government shares these understandings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I have the further honour to confirm that my Government shares these understandings and that your letter and this letter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Yours sincerely

Andrew Robb

CHAPTER 12
GOVERNMENT PROCUREMENT

ARTICLE 12.1: SCOPE

Application of Chapter

1. This Chapter shall apply to any measure regarding covered procurement.

2.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covered procurement" means a government procurement of goods, services or both:

   (a) by any contractual means, including purchase, rental, hire purchase, or lease, with or without an option to buy, build-operate-transfer contracts and public works concessions contracts;

   (b) for which the value, as estimated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equals or exceeds the relevant threshold specified in Annex 12-A;

   (c) that is conducted by a procuring entity;

   (d) that is not excluded from coverage by this Chapter; and

   (e) subject to the conditions specified in Annex 12-A.

3. This Chapter shall not apply to:

   (a)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by a procuring entity of a Party from another entity of that Party, or between a procuring entity of a Party and a regional or local government of that Party;

   (b) non-contractual agreements or any form of assistance that a Party provides, including grants, loans, equity infusions, fiscal incentives, subsidies, guarantees, and cooperative agreements;

   (c) procurement for the direct purpose of providing foreign assistance;

   (d) procuremen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procuring Party, for consumption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procuring Party;

   (f) public employment contracts;

   (g) procurement conducted under the particular procedures or conditions of an international agreement relating to the stationing of troops or relating to the joint implementation by the signatory countries of a project, or under the particular procedures or conditions of an international organisation, or funded by international grants, loans, or other assistance to the extent that the provision of such assistance is subject to conditions inconsistent with this Chapter;

   (h) procurement funded by grants or sponsorship payments received from a person other than a procuring entity of a Party;

(i) the acquisition or rental of land, buildings, or other immovable property or rights thereon where not part of an arrangement for procurement of construction services;

(j) procurement of financial advisory and asset management services pertaining to reserves held by each Party, including for the purposes of funding retirement benefits; or

(k) the procurement or acquisition of fiscal agency or depository services, liquidation and management services for regulated financial institutions, or services related to the sale, redemption and distribution of public debt, including loans and government bonds, notes, derivatives and other securities.

Valuation of Contracts

4. In estimating the value of a procurement for the purposes of ascertaining whether it is a covered procurement, a procuring entity shall:

(a) take into account all forms of remuneration, including any premiums, fees, commissions, interest, other revenue streams that may be provided for in the procurement and, where the procurement provides for the possibility of option clauses, the maximum total value of the procurement, inclusive of optional purchases; and

(b) without prejudice to paragraph 6, where the procurement is to be conducted in multiple parts, with contracts to be awarded at the same time or over a given period to one or more suppliers, base its calculation on the total maximum value of the procurement over its entire duration.

5. The selection of the valuation method by a procuring entity shall not be used, nor shall any procurement requirement be divided, for the purposes of avoiding the application of this Chapter.

6. In the case of procurement by lease, rental, or hire purchase of goods or services, or procurement for which a total price is not specified, the basis for valuation shall be:

(a) in the case of a fixed-term contract:

(i) where the term of the contract is 12 months or less, the total estimated maximum value for its duration; or

(ii) where the term of the contract exceeds 12 months, the total estimated maximum value, including any estimated residual value;

(b) where the contract is for an indefinite period, the estimated monthly instalment multiplied by 48; and

(c) where it is not certain whether the contract is to be a fixed-term contract, subparagraph (b) shall be used.

7. Where the total estimated maximum value of a procurement over its entire duration is not known, the procurement shall be a covered procurement, unless otherwise excluded under this Chapter.

8. The Parties acknowledge and affirm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Defence Industry Cooper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partment of Defence of Australia*, dated 8 August 2001 (the "MOU"), including any amendment to or extension thereto. The Parties recognise that the benefits and responsibilities established under the MOU will continue to apply.

ARTICLE 12.2: EXCEPTIONS

1. Provided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that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the Part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between the Parties,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a)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order or safety;

(b)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c) necessary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or

(d) relating to goods or services of handicapped persons, of philanthropic or not-for-profit institutions, or of prison labour.

2. The Parties understand that paragraph 1(b) includes environmental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3. Further to Article 22.2 (Essential Security),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taking any action which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relating to government procurement indispensable for national security or for national defence purposes.

ARTICLE 12.3: GENERAL PRINCIPLES

National Treatment and Non-Discrimination

1. With respect to any measure regarding covered procurement, each Party and its procuring entities shall accord to the goods, services and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e most favourable treatment the Party and its procuring entities accord to domestic goods, services and suppliers.

2. With respect to any measure regarding covered procurement, neither a Party nor its procuring entities shall:

(a) treat a locally established supplier less favourably than another locally established supplier on the basis of degree of foreign affiliation or ownership; or

(b) discriminate against a locally established supplier on the basis that the goods or services offered by that supplier for a particular procurement are goods or services of the other Party.

Measures Not Specific to Procurement

3.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to measures regarding customs duties and other charges of any kind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the method of levying such duties and charges, or other import regulations including restrictions and formalities, and measures affecting trade in services other than measures regarding covered procurement.

Prohibition of Offsets

4. Neither a Party nor its procuring entities shall seek, take account of, impose or enforce offsets at any stage of a covered procurement.

Rules of Origin

5. Each Party shall apply to covered procurements of goods or services the rules of origin that it applies in the normal course of trade to those goods or services.

Conduct of Procurement and Tendering Procedures

6.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procuring entities comply with this Chapter in conducting covered procurements.

7. A procuring entity may use open, selective or limited tendering procedures.

8. No procuring entity shall prepare, design, or otherwise structure or divide any procurement, in any stage of the procurement, for the purposes of avoiding the application of this Chapter.

9. Further to Article 22.4 (Disclosure of Information),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be construed as requiring a Party or its procuring entities to disclose, furnish or allow access to confidential information furnished by a person where such disclosure might prejudice fair competition between suppliers, without the authorisation of the person that furnished that information.

ARTICLE 12.4: PUBLICATION OF NOTICES

Notice of Procurement

1. In an open tendering procedure, a procuring entity shall publish a notice inviting interested suppliers to submit tend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notice of procurement") in electronic or paper media that are widely disseminated and remain readily accessible to any interested supplier of the other Party for the entire period established for tendering.

2. Where, in a selective tendering procedure, a procuring entity publishes a notice inviting applications for participation or requesting suppliers to express their interest in a covered procurement, that notice shall be published in electronic or paper media that are widely disseminated and readily accessible to any interested supplier of the other Party.

3.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Chapter, each notice of procurement shall include:

(a)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rocuring entity and other information necessary to contact the procuring entity and obtain all relevant documents relating to the procurement;

(b) a description of the procurement and any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c) where appropriate, the time-frame for delivery of goods or services; and

(d) the address and time limit for the submission of tenders.

Notice of Planned Procurement

4. Each Party shall encourage its procuring entities to publish prior to, or as early as possible in, each fiscal year, a notice regarding their procurement plans for that fiscal year. The notice should, at a minimum, include a description of each planned procurement and indicate the expected time of commencement of the related tender procedure.

ARTICLE 12.5: TIME LIMITS

1. A procuring entity shall prescribe time limits for tendering that allow suppliers adequate time to submit applications or requests to participate in a covered procurement and to prepare and submit responsive tenders, taking into account the nature and complexity of the procurement.

2. A procuring entity shall require all participating suppliers to submit tenders in accordance with a common deadline. For greater certainty, this requirement shall also apply where:

(a) as a result of a need to amend information provided to suppliers during the procurement process, the procuring entity extends the time limit for qualification or tendering procedures; or

(b) negotiations are terminated and suppliers may submit new tenders.

3. Unless provided for in paragraph 4, the final date for the receipt of tenders shall not be less than 25 days from the date on which a notice of procurement is published or, in the case of selective tendering, from the date on which the procuring entity invites suppliers to submit tenders.

4. A procuring entity may reduce the time limit for the receipt of tenders to not less than 10 days:

(a) where the procuring entity has published a separate notice, including a notice of planned procurement under Article 12.4.4, at least 30 days and not more than 12 months in advance, and such separate notice contains a description of the procurement, the time limits for the submission of tenders or, where appropriate, applications for participation in a procurement, and the address from which documents relating to the procurement may be obtained;

(b) in the case of the second or subsequent publication of notices for procurement of a recurring nature;

(c) where a state of urgency duly substantiated by the procuring entity renders the time period for tendering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impracticable; or

(d) where the procuring entity procures commercial goods or services that are sold or offered for sale to, and customarily purchased and used by, non-governmental buyers for non-governmental purposes, including goods and services with modifications customary in the commercial marketplace, as well as minor modifications not customarily available in the commercial marketplace.

ARTICLE 12.6: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1. A Party and its procuring entities shall limit any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in a covered procurement to those that ensure the potential supplier's capability to fulfil the contract in question.

2. In assessing whether a supplier satisfies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a Party and its procuring entities:

(a) shall evaluate the capabilities of a supplier on the basis of that supplier's business activitie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Party of the procuring entity;

(b) shall base its determination solely on the conditions that a procuring entity has specified in advance in notices or tender documentation;

(c) shall not impose the condition that, in order for a supplier to participate in a procurement or be awarded a contract, the supplier has previously been awarded one or more contracts by a procuring entity of that Party or that the supplier has prior work experience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and

(d) may require prior experience where relevant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procurement.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clude the exclusion of any supplier on grounds such as:

(a) bankruptcy;

(b) false declarations;

(c) significant or persistent deficiencies in performance of any substantive requirement or obligation under a prior contract;

(d) final judgments in respect of serious crimes or other serious offences;

(e) professional misconduct, or acts or omissions, that adversely reflect on the commercial integrity of the supplier; or

(f) failure to pay taxes.

ARTICLE 12.7: REGISTRATION AND QUALIFICATION OF SUPPLIERS

1. Where a Party or a procuring entity requires suppliers to register or pre-qualify before being permitted to participate in a covered procurement, that Party or procuring entity shall ensure that a notice inviting suppliers to apply for registration or pre-qualification is published in adequate time to enable interested suppliers to initiate and, to the extent that it is compatible with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procurement process, complete the registration or qualification procedures.

2. A Party or procuring entity may establish a multi-use list, provided that the Party or procuring entity annually publishes or otherwise makes available continuously in electronic form a notice inviting interested suppliers to apply for inclusion on the list. The notice shall include:

(a) a description of the goods and services, or categories thereof, for which the list may be used;

(b)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to be satisfied by suppliers and the methods that the procuring entity or other government agency will use to verify a supplier's satisfaction of the conditions;

(c)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rocuring entity or other government agency and other information necessary to contact the entity and obtain all relevant documents relating to the list; and

(d) any deadlines for submission of applications for inclusion on that list.

3. A Party or procuring entity that maintains a multi-use list shall include on the list all suppliers that satisfy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within a reasonably short time.

4. Where a supplier applies for participation in a covered procurement, or for inclusion on a list referred to in paragraph 2, a procuring entity shall promptly advise such supplier of its decision with respect to its application.

ARTICLE 12.8: TECHNICAL SPECIFICATIONS

1. A procuring entity shall not prepare, adopt or apply any technical specification or prescribe any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with the purpose or the effect of creating unnecessary obstacles to trade between the Parties.

2. In prescribing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the goods or services being procured, a procuring entity shall, where appropriate:

(a) set out the technical specification in terms of performance and functional requirements, rather than design or descriptive characteristics; and

(b) base the technical specification on international standards, where such standards exist, otherwise on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s, recognised national standards or building codes.

3. A procuring entity shall not prescribe technical specifications that require or refer to a particular trademark or trade name, patent, copyright, design, type, specific origin, producer or supplier, unless there is no other sufficiently precise or intelligible way of describing the procurement requirements and provided that, in such cases, the procuring entity includes words such as "or equivalent" in the tender documentation.

4. A procuring entity shall not seek or accept, in a manner that would have the effect of precluding competition, advice that may be used in the preparation or adoption of any technical specification for a specific covered procurement from a person that may have a commercial interest in the procurement.

5. Notwithstanding paragraph 4, a procuring entity may:

(a) conduct market research in developing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a specific covered procurement; or

(b) allow a supplier that has been engaged to provide design or consulting services to participate in procurements related to such services, provided it would not give the supplier an unfair advantage over other suppliers.

6. For greater certainty, a procuring entity may prepare, adopt or apply technical specifications to promote the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or protect the environment.

ARTICLE 12.9: TENDER DOCUMENTATION

1. A procuring entity shall promptly provide, on request, to any supplier participating in a covered procurement, tender documentation that includes all information necessary to permit suppliers to prepare and submit responsive tenders.

2. Unless already provided in the notice of procurement, such documentation shall include a complete description of:

(a) the procurement, including the nature, scope and, where known, the quantity of the goods or services to be procured and any requirements to be fulfilled, including any technical specifications, conformity certification, plans, drawings, or instructional materials;

(b) any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including any financial guarantees, information, and documents that suppliers are required to submit;

(c) all criteria to be considered in the awarding of the contract;

(d) where there will be a public opening of tenders, the date, time, and place for the opening of tenders; and

(e) any other terms or conditions relevant to the evaluation of tenders.

3. Neither a Party nor its procuring entities shall provide information with regard to a specific covered procurement in a manner which would have the effect of giving a potential supplier or group of potential suppliers an advantage over competitors.

4. A procuring entity shall reply promptly to any reasonable request for relevant information submitted by a supplier participating in the tendering procedure.

5. Where, during the course of a covered procurement, a procuring entity modifies the criteria or technical requirements set out in notices or tender documentation provided to participating suppliers, or amends or reissues notices or tender documentation, it shall transmit in writing all such modifications or all such amended or reissued notices or tender documentation:

(a) to all the suppliers that are participating at the time the information is amended, if known, and in all other cases, in the same manner as the original information was provided; and

(b) in adequate time to allow such suppliers to modify and resubmit their tenders, as appropriate.

ARTICLE 12.10: SELECTIVE TENDERING PROCEDURES

To ensure optimum effective competition under selective tendering procedures, procuring entities shall invite tenders from the maximum number of domestic suppliers and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that is consistent with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procurement system. They shall select the suppliers to participate in the procedure in a fair and non-discriminatory manner.

ARTICLE 12.11: LIMITED TENDERING

1. Provided that it does not use this Article for the purpose of avoiding competition, to protect domestic suppliers or in a manner that discriminates against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and subject to paragraph 2, a procuring entity may use limited tendering procedures. When a procuring entity applies limited tendering, it may choose,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procurement, not to apply Articles 12.4 through 12.10, 12.12.1, and 12.12.3 through 12.12.8.

2. A procuring entity may use limited tendering only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where, in response to a prior notice, invitation to participate, or invitation to tender:

(i) no tenders were submitted or no suppliers requested participation;

(ii) no tenders were submitted that conform to the essential requirements in the tender documentation;

(iii) no suppliers satisfied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or

(iv) the tenders submitted have been collusive,

and the procuring entity does not substantially modify the essential requirements of the procurement;

(b) where, for works of art, or for reasons connected with the protection of exclusive rights, such as patents or copyrights, or proprietary information, or where there is an absence of competition for technical reasons, the goods or services can be supplied only by a particular supplier and no reasonable alternative or substitute exists;

(c) for additional deliveries by the original supplier or its authorised agent that are intended either as replacement parts, extensions, or continuing services for existing equipment, software, services or installations, where a change of supplier would compel the procuring entity to procure goods or services not meeting requirements of interchangeability with existing equipment, software, services, or installations;

(d) for goods purchased on a commodity market;

(e) where a procuring entity procures a prototype or a first good or service that is intended for limited trial or developed at its request in the course of, and for, a particular contract for research, experiment, study, or original development. Original development of a first good or service may include limited production or supply in order to incorporate the results of field testing and to demonstrate that the good or service is suitable for production or supply in quantity to acceptable quality standards;

(f) for new construction services consisting of the repetition of similar construction services that conform to a basic project for which an initial contract was awarded following use of open tendering or selective tendering in accordance with this Chapter, and for which the procuring entity has indicated in the notice of procurement concerning the initial construction service that limited tendering procedures might be used in awarding contracts for such new construction services;

(g) for purchases made under exceptionally advantageous conditions that only arise in the very short term, such as from unusual disposals, unsolicited innovative proposals, liquidation, bankruptcy or receivership and not for routine purchases from regular suppliers;

(h) in so far as is strictly necessary where, for reasons of extreme urgency brought about by events unforeseen by the procuring entity, the goods or services could not be obtained in time by means of an open or selective tendering procedure; or

(i) where a contract is awarded to the winner of a design contest, provided that:

(i) the contest has been organised in a manner that is consistent with this Chapter; and

(ii) the contest is judged by an independent jury with a view to a design contract being awarded to the winner.

3. For each contract awarded under paragraphs 1 and 2, a procuring entity shall prepare a written report that includes:

(a) the name of the procuring entity;

(b) the value and kind of goods or services procured; and

(c) a statement indicating the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described in paragraphs 1 and 2 that justify the use of a procedure other than open or selective tendering procedures.

ARTICLE 12.12: RECEIPT AND OPENING OF TENDERS AND AWARDING OF CONTRACTS

1. A procuring entity shall receive and open all tenders under procedures that guarantee the fairness and impartiality of the procurement process.

2. A procuring entity shall treat all tenders in confidence subject to the laws of the Party of the procuring entity. In particular, it shall not provide information to particular suppliers that might prejudice fair competition between suppliers.

3. A procuring entity shall not penalise any supplier whose tender is received after the time specified for receiving tenders if the delay is due solely to mishandling on the part of the procuring entity.

4. Where a procuring entity provides suppliers with opportunities to correct unintentional errors of form between the opening of tenders and the awarding of the contract, the procuring entity shall provide the same opportunities to all participating suppliers.

5. A procuring entity shall require that, in order to be considered for award, a tender be submitted in writing and, at the time of opening, conform to the essential requirements of the tender documentation.

6. Unless a procuring entity determines that it is not in the public interest to award a contract, it shall award the contract to the supplier that the procuring entity has determined to satisfy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and whose tender is determined to be the most advantageous or best value for money,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and evaluation criteria specified in the notices and tender documentation.

7. Where a procuring entity receives a tender with a price that is abnormally lower than the prices in other tenders submitted, it may verify with the supplier that it can comply with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and is capable of fulfilling the terms of the contract.

8. A procuring entity shall not cancel a covered procurement, nor terminate or modify awarded contracts, so as to circumvent th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ARTICLE 12.13: POST-AWARD INFORMATION

1. No later than 60 days after award of a contract, a procuring entity shall publish a notice in an officially designated publication that includes at least the following information about the award:

(a)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rocuring entity;

(b) a description of the goods or services procured;

(c) the date of award or the contract date;

(d) the contract value;

(e) the name and address of the successful supplier; and

(f) the procurement method used.

2. A procuring entity shall promptly inform suppliers that have submitted tenders of the contract award decision. A procuring entity shall, on request, provide an unsuccessful supplier with the reasons that the procuring entity did not select its tender.

3. A procuring entity shall maintain records and reports relating to the conduct of procurements covered by this Chapter, including reports required by Article 12.11.3, for a period of at least three years after the date it awards a contract.

ARTICLE 12.14: ENSURING INTEGRITY IN PROCUREMENT PROCESSES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criminal or administrative penalties exist to sanction:

(a) a procurement official of that Party who solicits or accepts, directly or indirectly, any article of monetary value or other benefit, for that procurement official or for another person, in exchange for any act or omission in the performance of that procurement official's procurement functions;

(b) any person who offers or grants, directly or indirectly, to a procurement official of that Party, any article of monetary value or other benefit, for that procurement official or for another person, in exchange for any act or omission in the performance of that procurement official's procurement functions; and

(c) any person intentionally offering, promising or giving any undue pecuniary or other advantage, whether directly or through intermediaries, to a foreign procurement official, for that foreign procurement official or a third party, in order that the foreign procurement official act or refrain from acting in relation to the performance of procurement duties, in order to obtain or retain business or other improper advantage.

ARTICLE 12.15: DOMESTIC REVIEW PROCEDURES

1. In the event of a complaint by a supplier of a Party that there has been a failure to apply the other Party's measures implementing this Chapter in the context of a covered procurement in which the supplier has or had an interest, the Party of the procuring entity shall encourage the supplier to seek resolution of its complaint in consultation with the procuring entity. In such instances the procuring entity shall accord timely and impartial consideration to any such complaint and ensure that the making of any such complaint is not prejudicial to the supplier's participation in ongoing or future procurement or right to seek corrective measures under administrative or judicial review procedures.

2. Each Party shall maintain at least one impartial administrative or judicial authority that is independent of its procuring entities to receive and review, in a non-discriminatory, timely, transparent and effective manner, complaints that a supplier of the other Party submit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arty of the procuring entity, relating to a covered procurement.

3. Each Party shall make information on complaint mechanisms generally available.

ARTICLE 12.16: RECTIFICATIONS AND MODIFICATIONS TO COVERAGE

1. A Party may modify its coverage under this Chapter, provided that:

   (a) it notifies the other Party in writing and simultaneously offers acceptable compensatory adjustments to the other Party to maintain a level of coverage comparable to that existing prior to the modification,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2 and 3; and

   (b) the other Party does not object in writing within 30 days of the notification.

2. Each Party may make rectifications of a purely formal nature to its coverage under this Chapter, or minor amendments to its Government Procurement Schedules referred to in Annex 12-A, provided that it notifies the other Party in writing and the other Party does not object in writing within 30 days of the notification. A Party that makes such a rectification or minor amendment need not provide compensatory adjustments.

3. A Party need not provide compensatory adjustments in those circumstances where the Parties agree that the proposed modification covers a procuring entity over which a Party has effectively eliminated its control or influence. Where the Parties do not agree that such government control or influence has been effectively eliminated, the objecting Party may request further information or consultations with a view to clarifying the nature of any government control or influence and reaching agreement on the procuring entity's continued coverage under this Chapter.

ARTICLE 12.17: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build-operate-transfer contract and **public works concession contract** means any contractual arrangement the primary purpose of which is to provide for the construction or rehabilitation of physical infrastructure, plant, buildings, facilities, or other government owned works and under which, as consideration for a supplier's execution of a contractual arrangement, a procuring entity grants the supplier,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temporary ownership or a right to control and operate, and demand payment for the use of, such works for the duration of the contract;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means registration, qualification, and other pre-requisites for participation in a procurement;

in writing or **written** means any worded or numbered expression that can be read, reproduced, and later communicated. This may include electronically transmitted and stored information;

limited tendering procedures means those tendering procedures covered by Article 12.11;

multi-use list means a list of suppliers that a Party or procuring entity has determined satisfy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in that list, and that the Party or procuring entity intends to use more than once;

offset means any condition or undertaking that encourages local development or improves a Party's balance of payments accounts such as the use of domestic content, the licensing of technology, investment, counter-trade, and similar actions or requirements;

open tendering procedures means a procurement method where all interested suppliers may submit a tender;

procuring entity means an entity listed in Sections A, B or C of Annex 12-A;

selective tendering procedures means a procurement method where only suppliers qualified to tender or satisfying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are invited by the procuring entity to submit a tender;

services includes construction services unless otherwise specified;

supplier means a person that provides or could provide goods or services; and

technical specification means a tendering requirement that:

   (a) sets out the characteristics of goods or services to be procured, including quality, performance, safety, and dimensions, or the processes and methods for their production or provision; or

   (b) addresses terminology, symbols, packaging, marking, or labelling requirements, as they apply to a good or service.

ANNEX 12-A
GOVERNMENT PROCUREMENT

Section A: Central Government Entities

This Chapter applies to central government entities listed in each Party's Schedule to this Section where the value of the procurement is estim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2.1.4 through 12.1.7, to equal or exceed:

(a) for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130,000 SDR

(b) for procurement of construction services:
5,000,000 SDR

Schedule of Korea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Korea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Note 3)
Fair Trade Commissio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Korea Coast Guard (Note 5)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orea Customs Service
Korea Forest Servic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Note 3)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Unification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Note 5)
National Tax Servic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Prime Minister's Secretariat
Public Procurement Service (Note 4)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Statistics Korea
Supreme Prosecutors' Office

Notes to the Schedule of Korea

1. The above central government entities cover their "subordinate linear organizations",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attached organs", as prescribed i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2. This Chapter does not apply to any set-asides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n accordance with the *Act Relating to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nd its Presidential Decree, and the procurement of agricultural, fishery and livestock products in accordance with the *Grain Management Act*, the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nd the *Livestock Industry Act*.

3.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Subject to the decision of the Korean Government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2.2 (Essential Security), for the purchases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this Chapter will generally apply to the following FSC categories only, and for services and construction services listed in Section E and Section F, it will apply only to those areas which are not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and defence:

FSC 2510 Vehicular cab, body, and frame structural components
FSC 2520 Vehicular power transmission components
FSC 2540 Vehicular furniture and accessories
FSC 2590 Miscellaneous vehicular components
FSC 2610 Tires and tubes, pneumatic, non-aircraft
FSC 2910 Engine fuel system components, non-aircraft
FSC 2920 Engine electrical system components, non-aircraft
FSC 2930 Engine cooling system components, non-aircraft
FSC 2940 Engine air and oil filters, strainers and cleaners, non-aircraft
FSC 2990 Miscellaneous engine accessories, non-aircraft
FSC 3020 Gears, pulleys, sprockets and transmission chain
FSC 3416 Lathes
FSC 3417 Milling machines
FSC 3510 Laundry and dry cleaning equipment
FSC 4110 Refrigeration equipment
FSC 4230 Decontaminating and impregnating equipment
FSC 4520 Space heating equipment and domestic water heaters
FSC 4940 Miscellaneous maintenance and repair shop specialized equipment
FSC 5120 Hand tools, non-edged, non-powered
FSC 5410 Prefabricated and portable buildings
FSC 5530 Plywood and veneer
FSC 5660 Fencing, fences and gates
FSC 5945 Relays and solenoids
FSC 5965 Headsets, handsets, microphones and speakers
FSC 5985 Antennae, waveguide, and related equipment
FSC 5995 Cable, cord, and wire assemblies: communication equipment
FSC 6220 Electric vehicular lights and fixtures

FSC 6505 Drugs and biologicals
FSC 6840 Pest control agents and disinfectants
FSC 6850 Miscellaneous chemical, specialties
FSC 7310 Food cooking, baking, and serving equipment
FSC 7320 Kitchen equipment and appliances
FSC 7330 Kitchen hand tools and utensils
FSC 7350 Tableware
FSC 7360 Sets, kits, outfits, and modules food preparation and serving
FSC 7530 Stationery and record forms
FSC 7920 Brooms, brushes, mops, and sponges
FSC 7930 Cleaning and polishing compounds and preparations
FSC 8110 Drums and cans
FSC 9150 Oils and greases: cutting, lubricating, and hydraulic
FSC 9310 Paper and paperboard

4. Public Procurement Service: this Chapter covers only those procurements carried out by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for the entities listed in this Section. Regarding procurement for entities listed in Sections B and C, the coverage and thresholds for such entities thereunder shall be applied.

5. National Police Agency and Korea Coast Guard: this Chapter does not cover procurement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public order, as provided in Article 12.2.

Schedule of Australia (Notes 1 and 2)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ttorney-General's Department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ustralian Centre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Australian Crime Commission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Australian Federal Police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
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Australian Office of Financial Management (AOFM)
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
Australian Radiation Protection and Nuclear Safety Agency (ARPANSA)
Australian Research Council
Australian Taxation Office
Australian Trade Commission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 (AUSTRAC)
Australian Transport Safety Bureau
Bureau of Meteorology
Commonwealth Grants Commission
ComSuper
CrimTrac Agency
Defence Materiel Organisation (Note 3)
Department of Agriculture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Department of Defence (Note 3)
Department of Education
Department of Employment
Department of Environment
Department of Financ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epartment of Health
Department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Department of Industry
Department of Infrastructure and Regional Development
Department of Parliamentary Services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Department of the Senate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Department of the Treasury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Fair Work Commission
Family Court and Federal Circuit Court
Federal Court of Australia
Geoscience Australia
Inspector-General of Taxation
IP Australia
Migration Review Tribunal and Refugee Review Tribunal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National Blood Authority
National Capital Authority
National Competition Council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Office of the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Office of the Commonwealth Ombudsman
Office of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Office of the Fair Work Ombudsman
Office of the Inspector-General of Intelligence and Security
Office of the Official Secretary to the Governor-General
Office of Parliamentary Counsel
Old Parliament House
Productivity Commission
Professional Services Review Scheme
Royal Australian Mint
Safe Work Australia
Seafarers Safety,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Authority (Seacare Authority)
Workplace Gender Equality Agency

Notes to the Schedule of Australia

1. This Chapter covers only those entities which are listed in this Schedule.

2. This Chapter does not cover the procurement of motor vehicles by any entity listed in this Section.

3. Department of Defence and Defence Materiel Organisation

(a) this Chapter does not cover Department of Defence and Defence Materiel Organisation procurement of the following goods due to Article 12.2 (Exceptions):

Approximately

	equivalent to:
Weapons	FSC 10
Fire Control Equipment	FSC 12
Ammunition and Explosives	FSC 13
Guided Missiles	FSC 14
Aircraft and Airframe Structural Components	FSC 15
Aircraft Components and Accessories	FSC 16
Aircraft Launching, Landing and Ground Handling Equipment	FSC 17
Space Vehicles	FSC 18
Ships, Small Craft, Pontoons and Floating Docks	FSC 19
Ship and Marine Equipment	FSC 20
Ground Effect Vehicles, Motor Vehicles, Trailers and Cycles	FSC 23
Engines, Turbines, and Components	FSC 28
Engines Accessories	FSC 29
Bearings	FSC 31
Water Purification and Sewage Treatment Equipment	FSC 46
Valves	FSC 48
Maintenance and Repair Shop Equipment	FSC 49
Prefabricated Structures and Scaffolding	FSC 54
Communication, Detection, and Coherent Radiation Equipment	FSC 58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Components	FSC 59
Fiber Optics Materials, Components, Assemblies, and Accessories	FSC 60
Electric Wire, and Power and Distribution Equipment	FSC 61
Alarm, Signal and Security Detection Systems	FSC 63
Instruments and Laboratory Equipment	FSC 66
Specialty Metals	No Code

Note: Whether a good is included within the scope of this Note shall be determined solely according to the descriptions provided in the left column above. U.S. Federal Supply Codes are provided for reference purposes only *(for a complete listing of the United States Federal Supply Codes, to which the Australian categories are approximately equivalent, see http://www.fbo.gov)*.

(b) for Australia, this Chapter does not cover the following services, as elaborated in the Common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WTO system of classification – MTN.GNS/W/120, due to Article 12.2 *(for a complete listing of the Common Classification System, see: http://www.sice.oas.org/trade/nafta/chap-105.asp)*.

(i) design, development, integration, test, evaluation, maintenance, repair, modification, rebuilding and installation of military systems and equipment (approximately equivalent to relevant parts of U.S. Product Service Codes A & J)

(ii) operation of Government-owned Facilities (approximately equivalent to U.S. Product Service Code M)

(iii) space services (AR, B4 & V3)

(iv) services in support of military forces overseas

(c) this Chapter does not cove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by, or on behalf of, the Defence Intelligence Organisation, the Defence Signals Directorate, or the Defence Imagery and Geospatial Organisation.

(d) in respect of Article 12.3, the Australian Government reserves the right, pursuant to Article 12.2, to maintain the Australian industry capability program and its successor programs and policies.

Section B: Sub-Central Government Entities

1. This Chapter applies to sub-central government entities listed in each Party's Schedule to this Section where the value of the procurement is estim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2.1.4 through 12.1.7, to equal or exceed:

(a) for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for Korea: 200,000 SDR; and
for Australia: 355,000 SDR

(b) for procurement of construction services:
for Korea: 15,000,000 SDR; and
for Australia: 5,000,000 SDR.

2. This Chapter covers only those entities specifically listed in this Schedule.

Schedule of Korea

Busan Metropolitan City
Chungcheongbuk-do
Chungcheongnam-do
Daegu Metropolitan City
Daejeon Metropolitan City
Gangwon-do
Gwangju Metropolitan City
Gyeonggi-do
Gyeongsangbuk-do
Gyeongsangnam-do
Incheon Metropolitan Cit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eollabuk-do
Jeollanam-do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Ulsan Metropolitan City

Notes to the Schedule of Korea

1. The above sub-central administrative government entities cover their "subordinate organizations under direct control", "offices" and "branch offices", as prescribed i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Local Autonomy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Any entity with a separate legal personality that is not listed in this Annex is not covered.

2. This Chapter does not apply to any set-asides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ccording to the *Act Relating to Contracts to Which the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nd its Presidential Decree.

Schedule of Australia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 (Note 1)

ACT Gambling and Racing Commission
ACT Insurance Authority
ACTION
ACT Auditor-General
Chief Minister and Treasury Directorate
Commerce and Works Directorate
Community Services Directorate
Cultural Facilities Corporation
Economic Development Directorate
Education and Training Directorat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irectorate
Health Directorate
Housing ACT
Independent Competition and Regulatory Commission
Justice and Community Safety Directorate
Legal Aid Commission
Ombudsman of the ACT
Territory and Municipal Services Directorate

1. For the entities listed for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the Government Procurement chapter does not cover the procurement of health and welfare services, education services, utility services, or motor vehicles.

New South Wales (NSW) (Notes 1 and 2)

The Audit Office of New South Wales
Commis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
Department of Attorney General and Justic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Communities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Department of Finance and Services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frastructure
Department of Premier and Cabinet
Department of Trade and Investment, Regional Infrastructure and Services
Fire and Rescue NSW
Health Care Complaints Commission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 (for the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 this Chapter does not cover procurement related to the functions of the Privacy Commission)
Legal Aid NSW
Ministry for Police and Emergency Services
Ministry of Health
Motor Accidents Authority of NSW
New South Wales Crime Commission
New South Wales Electoral Commission
New South Wales Ombudsman
New South Wales Rural Fire Service
NSW Food Authority
NSW Rural Assistance Authority
Office of the Board of Studies
Office of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NSW
Office of the Environment Protection Authority
Police Integrity Commission
Public Service Commission
State Emergency Service
Sydney Harbour Foreshore Authority
Sydney Olympic Park Authority
Transport for NSW (for Transport for NSW, this Chapter does not cover procurement related to the functions of The Transport Construction Authority and The Country Rail Infrastructure Authority)
The Treasury
WorkCover NSW

1. For the entities listed for New South Wales, this Chapter does not cover the procurement of health and welfare services, education services, or motor vehicles.

2. For the entities listed for New South Wales, this Chapter does not apply to the procurements undertaken by a covered entity on behalf of a non-covered entity.

Northern Territory (NT) (Note 1)

Aboriginal Areas Protection Authority
Auditor-General's Office
Central Australian Hospital Network
Department of Arts and Museums
Department of the Attorney-General and Justice
Department of Business
Department of the Chief Minister
Department of Correctional Services
Department of Health
Department of Housing
Department of Land Resource Management
Department of Lands, Planning and the Environment
Department of the Legislative Assembly
Department of Local Government
Department of Mines and Energy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y and Fisheries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and Women's Policy
Department of Sport and Recreation
Department of Treasury and Finance
Health and Community Services Complaints Commission
Land Development Corporation
Museum and Art Galleries Board
Northern Territory Electoral Commission
Northern Territory Emergency Service
Northern Territory Employment and Training Authority
Northern Territory Fire and Rescue Service
Northern Territory Licensing Commission
Office of the Commissioner for Public Employment
Ombudsman's Office
Parks and Wildlife Commission of the Northern Territory
Police Force of the Northern Territory
Racing Commission
Remuneration Tribunal
Strehlow Research Centre Board
Top End Hospital Network
Tourism NT
Utilities Commission of the Northern Territory
Work Health Authority

1. For the entities listed for the Northern Territory, this Chapter does not cover set-asides on behalf of the Charles Darwin University pursuant to Partnership Agreements between the Northern Territory Government and Charles Darwin University.

Queensland (Notes 1 and 2)

Entities declared to be departments pursuant to section 14 of the *Public Service Act 2008*
Public Service Commission
Public Trust Office

1. For the entities listed for Queensland, this Chapter does not apply to procurement:

(a) by covered entities on behalf of non-covered entities;

(b) undertaken by departments, or parts of departments, which deliver health, education, training and/or arts services; and

(c) of health services, education services, training services, arts services, welfare services, government advertising and motor vehicles.

South Australia (SA) (Note 1)

Aboriginal Affairs and Reconciliation Division
Arts SA
Attorney-General's Department
Auditor-General's Department
Country Fire Service
Courts Administration Authority
Defence SA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Social Inclusion
Department for Correctional Services
Department of Education and Child Development
Department of Environment, Water and Natural Resources
Department of Further Education, Employment, Science and Technology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Department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Trade, Resources and Energy
Department of Planning,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Department of the Premier and Cabinet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and Regions of South Australia
Department of Treasury and Finance
Electoral Commission SA
Environment Protection Authority
Independent Gambling Authority
Legal Services Commission
Office for State / Local Government Relations
Parliament of South Australia
South Australian Fire and Emergency Services Commission
South Australian Metropolitan Fire Services
South Australia Police
South Australian Tourism Commission
State Emergency Services
State Procurement Board
TAFE SA

1. For the entities listed for South Australia, this Chapter does not cover the procurement of health and welfare services, education services, advertising services or motor vehicles.

Tasmania (Note 1)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Tourism and the Arts
Department of Education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epartment of Infrastructure, Energy and Resources
Department of Justice
Department of Police and Emergency Management
Department of Premier and Cabinet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Parks, Water and Environment
Department of Treasury and Finance
House of Assembly
Legislative Council
Legislature-General
Office of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Office of the Governor
Office of the Ombudsman
Tasmanian Audit Office
Tasmanian Health Organisation – North
Tasmanian Health Organisation – North West
Tasmanian Health Organisation – South

1. For the entities listed for Tasmania, this Chapter does not cover the procurement of health and welfare services, education services, or advertising services.

Victoria (Notes 1 and 2)

Commissioner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Department of Education, Early Childhood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Primary Industries
Department of Health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Department of Justice
Department of Premier and Cabinet
Department of State Development, Business and Innovation
Department of Transport, Planning and Local Infrastructure
Department of Treasury and Finance
Independent Broad-based Anti-corruption Commission
Office of the Chief Commissioner of Police (Victoria Police)
Office of the Commis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Office of the Essential Services Commission
Office of the Fire Services Levy Monitor
Office of the Legal Services Commissioner
Office of the Ombudsman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fice of Public Prosecutions
Office of the Road Safety Camera Commissioner
Office of the Taxi Services Commission
Office of the Victorian Commission for Gambling and Liquor Regulation
Office of the Victorian Responsible Gambling Foundation
State Services Authority
Victorian Auditor-General's Office
Victorian Electoral Commission
Victorian Equal Opportun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Victorian Inspectorate

1. For the entities listed for Victoria, this Chapter does not cover the procurement of motor vehicles.

2. For the entities listed for Victoria, this Chapter does not apply to procurements by covered entities on behalf of non-covered entities.

Western Australia

Botanic Gardens and Parks Authority
Corruption and Crime Commission (Western Australia)
Country High Schools Hostels Authority
Department of the Attorney General
Department for Child Protection
Department for Communitie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ood
Department of Commerce
Department of Corrective Services
Department of Culture and the Arts
Department of Education
Department of Training and Workforce Development
Department of Education Services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Conservation
Department of Finance
Department of Fire and Emergency Services
Department of Fisheries
Department of Health
Department of Housing
Department of Indigenous Affairs
Department of Local Government
Department of Mines and Petroleum
Department of Planning
Department of the Premier and Cabinet
Department of Racing, Gaming and Liquor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and Lands
Department of the Registrar Western Australian Industrial Relations Commission
Department of State Development
Department of Sport and Recreation
Department of Training and Workforce Development
Department of Treasury
Department of Water
Disability Services Commission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Gascoyne Development Commission
Goldfields Esperance Development Commission
Governor's Establishment
Great Southern Development Commission
Heritage Council of Western Australia
Kimberley Development Commission
Law Reform Commission of Western Australia
Legislative Assembly
Legislative Council
Main Roads Western Australia
Mid West Development Commission
Minerals and Energy Research Institute of Western Australia
National Trust of Australia (WA)
Office of the Auditor General
Office of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Office of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Office of the Inspector of Custodial Services
Office of the Parliamentary Commissioner for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Parliamentary Services Department
Peel Development Commission
Pilbara Development Commission
Public Sector Commission
Public Transport Authority
Rottnest Island Authority
Rural Business Development Corporation
Salaries and Allowances Tribunal
School Curriculum and Standards Authority
Small Business Development Corporation
South West Development Commission
State Library of Western Australia
Swan River Trust
Western Australia Police
Western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Western Australian Land Information Authority (Landgate)
Western Australian Planning Commission
Western Australian Sports Centre Trust (trading as VenuesWest)
Western Australian Tourism Commission
Wheatbelt Development Commission
Zoological Parks Authority

Section C: Other Covered Entities

This Chapter applies to other covered entities listed in each Party's Schedule to this Section where the value of the procurement is estim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2.1.4 through 12.1.7, to equal or exceed:

(a) for procurement of goods:
450,000 SDR

(b) for procurement of construction services:
15,000,000 SDR

Schedule of Korea

Industrial Bank of Korea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Korea Coal Corporation
Korea Development Bank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except purchases of products in the categories of HS Nos. 8504, 8535, 8537 and 8544)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Korea Gas Corporation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Korea Minting and Security Printing Corporation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Korea Resources Corporation

Korea Railroad Corporation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Korea Tourism Organization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Notes to the Schedule of Korea

1. This Chapter does not apply to any set-asides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ccording to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Rule on Contract Business of Public Institutions an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nd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 Act*.

Schedule of Australia (Notes 1, 2 and 3)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ustralian Financial Security Authority
Australian Fisheries Management Authority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Australian Institute of Marine Science
Australian Maritime Safety Authority
Australian Pesticides and Veterinary Medicines Authority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Comcare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Corporations and Markets Advisory Committee
The Director of National Parks
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uthority
Safe Work Australia
Sydney Harbour Federation Trust
Tourism Australia

Notes to the Schedule of Australia

1. This Chapter covers only those entities specifically listed in this Schedule.

2. For the entities listed in this Section, this Chapter covers only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construction services as specified in Australia's schedules in Sections D and F of this Annex.

3. For the entities listed in this Section, this Chapter does not cover the procurement of motor vehicles.

Section D: Goods

1. This Chapter applies to all goods procured by the entities listed in Sections A, B and C,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is Chapter, including this Annex.

2. This Chapter does not cover the procurement of blood and blood products, including plasma-derived products.

Section E: Services

This Chapter applies to all services procured by the entities listed in Sections A and B,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is Chapter, including this Annex.

Schedule of Korea

Of the WTO Universal List of Services as contained in document WTO/MTN.GNS/W/120, the following services are included (all others being excluded):

GNS/W/120	CPC	Description
1.A.b.	862	Accounting, auditing and bookkeeping services
1.A.c.	863	Taxation services
1.A.d.	8671	Architectural services
1.A.e.	8672	Engineering services
1.A.f.	8673	Integrated engineering services
1.A.g.	8674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s
1.B.a.	841	Consultancy service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f computer hardware
1.B.b.	842	Software implementation services
1.B.c.	843	Data processing services
1.B.d.	844	Data base services
1.B.e.	845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of office machinery and equipment (including computers)
1.E.a.	83103	Rental/leasing services without operators relating to ships
1.E.b.	83104	Rental/leasing services without operators relating to aircraft
1.E.c.	83101, 83105*	Rental/leasing services without operators relating to other transport equipment (only passenger vehicles for less than fifteen passengers)
1.E.d.	83106, 83108, 83109	Rental/leasing services without operators relating to other machinery and equipment
	83107	Rental/leasing services without operator relating to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
1.F.a.	8711, 8719	Advertising agency services
1.F.b.	864	Market research and public opinion polling services
1.F.c.	865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s
1.F.d.	86601	Project management services
1.F.e.	86761*	Composition and purity testing and analysis services (only inspection, testing and analysis services of air, water, noise level and vibration level)
	86764	Technical inspection services
1.F.f.	8811*, 8812*	Consulting services relating to agriculture and animal husbandry
	8814*	Services incidental to forestry (excluding aerial fire fighting and disinfection)
1.F.g.	882*	Consulting services relating to fishing
1.F.h.	883*	Consulting services relating to mining
1.F.m.	86751, 86752	Related scientific and technical consulting services

GNS/W/120	CPC	Description
1.F.n.	633, 8861 8862, 8863 8864, 8865 8866	Maintenance and repair of equipment
1.F.p.	875	Photographic services
1.F.q.	876	Packaging services
1.F.r.	88442*	Printing (screen printing, gravure printing, and services relating to printing)
1.F.s.	87909*	Stenography services Convention agency services
1.F.t.	87905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ervices
2.C.j.	7523*	On-line information and data-base retrieval
2.C.k.	7523*	Electronic data interchange
2.C.l.	7523*	Enhanced/value-added facsimile services including store and forward, store and retrieve
2.C.m.	-	Code and protocol conversion
2.C.n.	843*	On-line information and/or data processing (including transaction processing)
2.D.a.	96112*, 96113*	Motion picture and video tap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ervices (excluding those services for cable TV broadcasting)
2.D.e.	-	Recor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ervices (sound recording)
6.A.	9401*	Refuse water disposal services (only collection and treatment services of industrial waste water)
6.B.	9402*	Industrial refuse disposal services (only collection, transport, and disposal services of industrial refuse)
6.D.	9404*, 9405*	Cleaning services of exhaust gases and noise abatement services (services other than construction work services)
	9406*, 9409*	Environmental testing and assessment services (onl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ervices)
11.A.b.	7212*	International transport, excluding cabotage
11.A.d.	8868*	Maintenance and repair of vessels
11.F.b.	71233*	Transportation of containerized freight, excluding cabotage
11.H.c	748*	Freight transport agency services - Maritime agency services - Maritime freight forwarding services - Shipping brokerage services - Air cargo transport agency services - Customs clearance services
11.I.	-	Freight forwarding for rail transport

Notes to the Schedule of Korea

Asterisks (*) designate "part of" as described in detail in the Revised Conditional Offer of the Republic of Korea Concerning Initial Commitments on Trade in Services.

Schedule of Australia

This Chapter does not cover the procurement of:

(a) plasma fractionation services;

(b) government advertising services;

(c) legal services;

(d) telecommunications;

(e) educational services;

(f) financial services;

(g) transport services; or

(h) health and welfare services.

Section F: Construction Services

This Chapter applies to all construction services procured by the entities listed in Sections A, B and C,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is Chapter, including in this Annex.

Schedule of Korea

1. This Chapter applies to the procurement of all construction services under Division 51 of the United Nations Provisional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CPC) procured by the entities listed in Sections A through C,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is Chapter.

2. This Chapter does not apply to any set-asides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ccording to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Schedule of Australia

For the purposes of Articles 12.6.1 and 12.6.2 Australia requires, as a condition for participation in procurement of building and construction services, compliance with the National Code of Practice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related implementation guidelines at the central and sub-central government levels, and their successor policies and guidelines. In this respect Australia shall accord to the goods, services and suppliers of Korea,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e most favourable treatment it accords to its own goods, services and suppliers.

Section G: General Notes

Unless otherwise specified herein, the following General Notes in each Party's Schedule apply without exception to this Chapter, including to all sections of this Annex.

Schedule of Korea

1. This Chapter does not apply to procurement in furtherance of human feeding programs.

2. For greater clarity, procurement for airports is not covered under this Agreement.

Schedule of Australia

This Chapter does not apply to:

(a) any form of preference to benefi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b) measures to protect national treasures of artistic, historic, or archaeological value;

(c) measures for the health and welfare of indigenous people; and

(d) measures for the economic and social advancement of indigenous people.

Section H: Value of Thresholds

General

1. The value of the thresholds set out in Sections A, B and C shall be adjusted at two-year intervals with each adjustment taking effect in January.

2. Each Party shall calculate and convert for itself the value of the thresholds into its own national currency using the conversion rates published by the IMF in its monthly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Except where paragraph 3 applies, the conversion rates will be the average of the daily values of the respective national currency in terms of the SDR over the two-year period preceding 1 October or 1 November of the year before the adjusted thresholds are to take effect.

3. In respect of thresholds for sub-central entities Australia may apply the methodology for conversion of SDR amounts into Australian dollars set out in Section 8, Annex 15-A of the Australi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a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o the relevant SDR value set out in paragraph 2.

4. A Party may round its calculations for adjusted thresholds covered by this section according to the following:

(a) for Korea, to the nearest one million Korean won for goods and services and the nearest 10 million Korean won for construction services; and

(b) for Australia, to the nearest one thousand Australian dollars.

5.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of the current thresholds in their respective currencies immediately after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the adjusted thresholds in their respective currencies thereafter in a timely manner.

6. The Parties shall consult if a major change in a national currency relative to the SDR or to the national currency of the other Party were to create a significant problem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of this Chapter.

CHAPTER 13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ICLE 13.1: GENERAL PROVISIONS

Nature and Scope of Obligation

1. Each Party recognises the importance of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le ensuring that measures to enforce those rights do not themselves become barriers to legitimate trade.

2. Each Party shall be free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method of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within their own legal system and practice.

Observance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3. Each Party affirms its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TRIPS Agreement, the agreements administered by the WIPO and any other multilateral agreement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to which the Parties are party.

4. Each Party shall undertake reasonable efforts to ratify or accede to the *Patent Law Treaty*, done at Geneva on 1 June 2000 and the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done at Singapore on 27 March 2006,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ts law and subject to the fulfilment of its necessary internal requirements.

More Extensive Protection and Enforcement

5. A Party may provide more extensive protection for,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 its law than this Chapter requires, provided that the more extensive protection does not contravene this Chapter.

National Treatment

6. In respect of all categ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covered in this Chapter, each Party shall accord to nationals[58]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it accords to its own nationals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59] and enjoyment of su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ny benefits derived from such rights, subject to the exceptions provided in multilateral intellectual property agreements to which either Party is, or becomes, a contracting party.

7. A Party may derogate from paragraph 6 in relation to its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including requiring a national of the other Party to designate an address for service of process in its territory, or to appoint an agent in its territory, provided that such derogation is:

---

[58]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6 and 7, and Article 13.7.1, a "national" of a Party shall include, in respect of the relevant right, any person (as defined in Article 1.4 (Definitions)) of that Party that would meet the criteria for eligibility for protection of that right provided for in the agreements mentioned in paragraph 3.

[59]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6, "protection" includes:

(a) matters affecting the availability, acquisition, scope, maintenance,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well as matters affecting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pecifically covered by this Chapter; and

(b) the prohibition on circumvention of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s set out in Article 13.5.9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concerning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set out in Article 13.5.10.

(a) 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that are not inconsistent with this Chapter; and

(b) not applied in a manner that would constitute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8. Paragraph 6 shall not apply to procedures provided in multilateral agreements to which either Party is a party concluded under the auspices of the WIPO in relation to the acquisition or mainten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pplication of Agreement to Existing Subject Matter and Prior Acts

9.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Chapter, including in Article 13.5.7, this Chapter shall give rise to obligations in respect of all subject matter existing at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at is protected on that date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where protection is claimed, or that meets or comes subsequently to meet the criteria for protection under this Chapter.

10.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Chapter, including in Article 13.5.7, a Party shall not be required to restore protection to subject matter that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as fallen into the public domain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where the protection is claimed.

11. This Chapter shall not give rise to obligations in respect of acts that occurred befor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ransparency

12. Further to Article 19.1 (Publication), and with the object of making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ansparent,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ll laws, regulations, and procedures concerning the protection or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in writing and are published, or where publication is not practicable, made publicly available in its national language and in such a manner as to enable governments and right holders to become acquainted with them.

ARTICLE 13.2: TRADEMARKS

Trademark Protection

1. Neither Party shall require, as a condition of registration, that trademarks be visually perceptible, nor deny registration of a trademark solely on the grounds that the sign of which it is composed is a sound or a scent[60].

2.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rademarks shall include collective marks and certification marks. Each Party shall also provide that geographical indications are eligible for protection as trademarks.

3.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he owner of a registered trademark shall have the exclusive right to prevent all third parties not having the owner's consent from using in the course of trade identical or similar signs, including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goods or services that are identical or similar to those goods or services in respect of which the owner's trademark is registered, where such use would result in a likelihood of confusion. In the case of the use of an identical sign, for identical goods or services, a likelihood of confusion shall be presumed.

[60] A party may require an adequate description, which can be represented graphically, of the trademark.

Exceptions to Trademark Rights

4. Each Party may provide limited exceptions to the rights conferred by a trademark, such as fair use of descriptive terms, provided that such exceptions take account of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owner of the trademark and of third parties.

Well-Known Trademarks

5. Neither Party shall require, as a condition for determining that a trademark is a well-known mark, that the trademark has been registered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or in another jurisdiction.

6. Article 6*bis* of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done at Paris on 20 March 188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goods or services that are not identical or similar to those identified by a well-known trademark[61], whether registered or not, provided that use of that trademark in relation to those goods or services would indicate a connection between those goods or services and the owner of the trademark, and provided that the interests of the owner of the trademark are likely to be damaged by such use.

7.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appropriate measures to refuse or cancel the registration and prohibit the use of a trademark that is identical or similar to a well-known trademark, for related goods or services, if the use of that trademark is likely to cause confusion or is likely to deceive.

Trademark Applications and Registrations

8. Each Party shall provide:

(a) a system for the registration of trademarks, in which the reasons for a refusal to register a trademark shall be communicated in writing and may be provided electronically to the applicant, who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contest such refusal and to appeal a final refusal judicially. Each Party shall provide a publicly available electronic database of trademark applications and registrations;

(b) an opportunity for interested parties to oppose trademark applications; and

(c) a system that permits owners of registered trademarks to assert their rights in trademarks, and interested parties to challenge rights in trademarks, through administrative or judicial means, or both.

9.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nitial registration and each renewal of registration of a trademark shall be for a term of no less than 10 years.

Recordation of Trademark Licences

10. Neither Party shall require recordation of trademark licences to establish the validity of the licence, to assert any rights in a trademark, or for any other purpose.

ARTICLE 13.3: COOPERATION

1. The Parties shall cooperate and collaborate with a view to ensuring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at such protection is consistent with promoting trade in goods

[61]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trademark is well-known, neither Party shall require that the reputation of the trademark extend beyond the sector of the public that normally deals with the relevant goods or services.

and services between the Parties, subject to their respective laws, regulations and policies. Such cooperation may include:

(a) exchange of information concerning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tween relevant agencies responsible for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 promotion of contacts and cooperation among their respective agencies, including enforcement agencie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other organisations with an interes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 sharing information and experiences on relations of the Parties with non-Parties on matter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A Party shall, on request of the other Party, give proper consideration to any specific cooperation proposal made by the other Party relating to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ICLE 13.4: DOMAIN NAMES ON THE INTERNET

1. Each Party shall require that the management of its country-code top-level domain (hereinafter referred to as "ccTLD") provide an appropriate procedure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based on the principles established in the Uniform Domain-Name Dispute-Resolution Policy.

2. Each Party shall require that the management of its ccTLD provide online public access to a reliable and accurate database of domain-name registrations in accordance with its law regarding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RTICLE 13.5: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uthors,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sation[62] have the right to authorise or prohibit[63] all reproductions of their works, performances[64], phonograms and broadcasts in any manner or form, permanent or temporary (including temporary storage in electronic form)[65].

[62]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authors,"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sations" include any successors in title.

[63]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with respect to copyrights and related rights, the "right to authorise or prohibit" refers to exclusive rights.

[64]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with respect to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 "performance" means a performance fixed in a phonogram unless otherwise specified.

[65] Each Party shall confine limitations or exceptions to the rights described in paragraph 1 to certain special cases that do not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performance, phonogram or broadcast and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right holder. For greater certainty, each Party may adopt or maintain limitations or exceptions to the rights described in paragraph 1 for fair use, as long as any such limitation or exception is confined as stated in the previous sentence.

2. Each Party shall provide authors,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with the right to authorise or prohibit the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of the original and copies[66] of their works,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hrough sale or other transfer of ownership[67].

3. Neither Party shall subject the enjoyment and exercise of the rights of authors,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sations provided in this Chapter to any formality.

Hierarchy of Rights

4. In order to ensure that no hierarchy is established between rights of authors, on the one hand, and rights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sations, on the other hand,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n cases where authorisation is needed from both the author of a work embodied in a phonogram or a broadcast and a performer, producer or broadcasting organisation owning rights in the phonogram or broadcast, the need for the authorisation of the author shall not cease to exist because the authorisation of the performer, producer or broadcasting organisation is also required. Likewise,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n cases where authorisation is needed from both the author of a work embodied in a phonogram or broadcast and a performer, producer or broadcasting organisation owning rights in the phonogram or broadcast, the need for the authorisation of the performer, producer or broadcasting organisation shall not cease to exist because the authorisation of the author is also required.

Term of Protection

5.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where the term of protection of a work (including a photographic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is to be calculated:

(a) on the basis of the life of a natural person, the term shall be not less than the life of the author and 70 years after the author's death; and

(b) on a basis other than the life of a natural person, the term shall be:

(i) not less than 70 years from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of the first authorised publication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or

(ii) failing such authorised publication within 50 years from the creation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not less than 70 years from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of the creation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6.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he term of protection of a broadcast shall not be less than 50 years after the first broadcast took place.

7. Article 18 of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done at Berne on 9 September 1886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erne Convention"), and Article 14.6 of the TRIPS Agreemen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ubject matter, rights, and obligations in this Article and Articles 13.6 and 13.7.

8.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for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ny person acquiring or holding any economic right in a work, performance, phonogram or broadcast:

[66] The expression "copies" and "original and copies", being subject to the right of distribution in this paragraph, refer exclusively to fixed copies that can be put into circulation as tangible objects.

[67]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a Party's right to determine the conditions, if any, under which the exhaustion of this right applies after the first sale or other transfer of ownership of the original or a copy of their works, performances or phonograms with the authorisation of the right holder.

(a) may freely and separately transfer that right by contract; and

(b) by virtue of a contract, including contracts of employment underlying the creation of works, performances, phonograms and broadcasts, shall be able to exercise that right in that person's own name and enjoy fully the benefits derived from that right.

Protection of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s

9.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adequate legal protection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against:

(a) the circumvention of any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s that control access to a protected work, performance, phonogram, broadcast or other subject matter, which the person concerned carries out in the knowledge, or with reasonable grounds to know, that such person is pursuing that objective;

(b) the manufacture, import, distribution, offering to the public, provision, or otherwise trafficking of devices, products, or components, or the offering to the public, or provision of services, that:

(i) are promoted, advertised, or marketed for the purpose of circumvention of any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

(ii) have only a limited commercially significant purpose or use other than to circumvent any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 or

(iii) are primarily designed, produced, or performed for the purposes of enabling or facilitating the circumvention of any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

Protection of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10.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adequate legal protection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against any person knowingly performing any of the following acts:

(a) the removal or alteration of any electronic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without authority; or

(b) the distribution, importation for distribution, broadcasting, communication or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without authority, of works or copies of the works or other subject matter protected under this Chapter knowing that electronic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has been removed or altered without authority,

if such person knows, or has reasonable grounds to know, that by doing so it is inducing, enabling, facilitating or concealing an infringement of any copyright or related rights as provided by the law of the Party.

Application of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11. Each Party shall also provide for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to be applied when any person, other than a non-profit library, archive, educational institution, or public non-commercial broadcasting entity, is found to have engaged wilfully and for the purposes of commercial advantage or financial gain in any of the activities prescribed in paragraphs 9 and 10.

Exceptions and Limitations

12. Each Party may provide for exceptions and limitations to measures implementing paragraphs 9 and 10 in accordance with its law and the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13.1.3, provided that they do not significantly impair the adequacy of legal protection of those measures and the effectiveness of legal remedies against the acts prescribed in paragraphs 9 and 10.

Exceptions to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13. With respect to this Article and Articles 13.6 and 13.7, each Party shall confine limitations or exceptions to exclusive rights to certain special cases that do not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performance, phonogram or broadcast, and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right holder[68].

14. Notwithstanding paragraph 13, neither Party shall permit the retransmission of television signals (whether terrestrial, cable or satellite) on the Internet without the authorisation of the right holder or right holders of the content of the signal and, if any, of the signal[69].

ARTICLE 13.6: COPYRIGHT

Without prejudice to Articles 11(1)(ii), 11*bis*(1)(i) and 11*bis*(1)(ii), 11*ter*(1)(ii), 14(1)(ii), and 14*bis* of the Berne Convention, each Party shall provide authors with the exclusive right to authorise or prohibit the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their works, by wire or wireless means, including the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of their works in such a way that members of the public may access these works from a place and at a time individually chosen by them.

ARTICLE 13.7: RELATED RIGHTS

1. With respect to the rights accorded under this Chapter:

(a) to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each Party shall accord those rights to the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who are nationals of the other Party, and accord those rights with respect t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hat are first published or first fixed[70]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71]; and

(b) to broadcasting organisations, each Party shall accord those rights to the broadcasting organisations if the headquarters of the broadcasting organisations are situated in the other Party or the broadcast was transmitted from a transmitter situated in the other Party[72].

---

[68] For greater certainty, this paragraph does not reduce the capacity of the Parties to provide for exceptions or limitations to exclusive rights in accordance with multilateral agreement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to which either Party is, or becomes, a party.

[69]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4 and for greater certainty, retransmission within a Party's territory over a closed, defined, subscriber network that is not accessible from outside the Party's territory shall not constitute retransmission on the Internet.

[70] For the purposes of Article 13.7, "fixation" includes the finalisation of the master tape or its equivalent.

[71] With respect to the protection of phonograms, a Party may apply the criterion of fixation instead of the criterion of publication.

[72] With respect to the protection of broadcasts, a Party may protect broadcasts only if the headquarters of the broadcasting organisation is situated in the other Party's territory and the broadcast was transmitted from a transmitter situated in the other Party's territory.

Rights of Performers

2. Each Party shall provide performers with the right to authorise or prohibit:

(a)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their unfixed performances, except where the performance is already a broadcast performance; and

(b) the fixation of their unfixed performances.

Rights of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3. Each Party shall provide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with the right to authorise or prohibit:

(a) with respect to performers, the commercial rental to the public of the original and copies of their performances fixed in phonograms, even after distribution of them by, or pursuant to, authorisation by the performer, and with respect to producers of phonograms, the commercial rental to the public of the original and copies of their phonograms, even after distribution of them by, or pursuant to, authorisation by the producer of phonogram; and

(b) the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of their performances fixed in phonograms, with respect to performers, or their phonograms, with respect to producers of phonograms, by wire or wireless means, in such a way that members of the public may access them from a place and at a time individually chosen by them.

4. Each Party shall provide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with the right to a single equitable remuneration for the direct or indirect use of phonograms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in accordance with its law.

Rights of Broadcasting Organisations

5.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broadcasting organisations shall have the exclusive right to authorise or prohibit:

(a) there broadcasting of their broadcasts;

(b) the fixation of their broadcasts; and

(c) the reproduction of fixations.

ARTICLE 13.8: PATENTS

1. Each Party shall make patents available for any invention, whether a product or process, in all fields of technology, provided that the invention is new, involves an inventive step, and is 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In addition, each Party confirms that patents shall be available for any new uses or methods of using a known product[73].

[73]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 Party may treat the term "inventive step" as synonymous with "non-obvious" and the term "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as synonymous with "useful."

Exclusion from Patentability

2. Each Party may only exclude from patentability:

(a) inventions, the prevention within its territory of the commercial exploitation of which is necessary to protect *ordre public* or morality, including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or to avoid serious prejudice to the environment, provided that such exclusion is not made merely because the exploitation is prohibited by its law; and

(b) diagnostic, therapeutic and surgical methods for the treatment of humans or animals.

Limited Exceptions to Patent Rights

3. Each Party may provide limited exceptions to the exclusive rights conferred by a patent, provided that such exceptions do not unreasonably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patent and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patent owner, taking account of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ird parties.

Revocation of Patent

4.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patent may be revoked on grounds that would have justified a refusal to grant the patent. A Party may also provide that fraud, misrepresentation or inequitable conduct may be the basis for revoking a patent or holding a patent unenforceable[74].

Grace Period for Patents

5. Each Party shall disregard information contained in public disclosures used to determine if an invention is novel or has an inventive step if the public disclosure:

(a) was made or authorised by, or derived from, the patent applicant; and

(b) occurred within 12 months prior to the date of filing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of the application.

6. Each Party shall provide patent applicants with at least one opportunity to make amendments, corrections and observations in connection with their applications.

Disclosure of Claimed Invention

7.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disclosure of a claimed invention shall be considered to be sufficiently clear and complete if it provides information that allows the invention to be made and used by a person skilled in the art, without undue experimentation, as of the filing date.

8.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claimed invention:

(a) is sufficiently supported by its disclosure if the disclosure reasonably conveys to a person skilled in the art that the applicant was in possession of the claimed invention, as of the filing date; and

[74] For Australia, a patent may be revoked or cancelled on the basis that the patent is used in a manner determined to be anticompetitive by that Party's judicial authorities. For Korea, a patent may be revoked or cancell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x officio*, or on request of any interested party, if a patented invention has not been continuously worked in Korea for a period of two years or more from the date of the award under Article 107(1)(i) of the *Patent Act*.

(b) is 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if it has a specific, substantial and credible utility.

9.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establish a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ir respective patent offices as a basis for progress towards the mutual exploitation of search and examination work.

ARTICLE 13.9: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eneral Obligations

1. For greater certainty, the obligations specified in this Article are limited to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if mentioned, a particula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2.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final judicial decisions or administrative rulings of general application for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 in writing and state any relevant findings of fact and the reasoning or the legal basis on which the decisions or rulings are based. Each Party shall also provide that those decisions or rulings be published[75] or, where publication is not practicable, otherwis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in its national language in such a manner as to enable governments and right holders to become acquainted with them.

3. Each Party shall publicise information on its efforts to provide effectiv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its civil, administrative and criminal systems, including any statistical information that the Party may collect for such purposes[76].

4. In civil, criminal, and if applicable, administrative procedures involving copyright or related rights,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a presumption that the person whose name is indicated as the author, producer, performer, broadcasting organisation or publisher of the work, performance, phonogram or broadcast in the usual manner is the designated right holder in such work, performance, phonogram or broadcast. Each Party shall also provide for a presumption that in the absence of proof to the contrary, the copyright or related right subsists in such subject matter in accordance with its law. In civil, administrative and criminal proceedings involving trademarks,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a rebuttable presumption that a registered trademark is valid. In civil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involving patents,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a rebuttable presumption that a patent is valid, and shall provide that each claim of a patent is presumed valid independently of the validity of the other claims.

Civi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Remedies

5. Each Party shall make available to right holders[77] civil judicial procedures concerning the enforcement of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

6.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infringer to pay the right holder:

(i) damages adequate to compensate for the injury the right holder has suffered as a result of the infringement; or

(ii) at least in the case of copyright or related rights infringement and trademark counterfeiting, the profits of the infringer that are attributable to the infringement, which may be presumed to be the amount of damag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i); and

(b) in determining damages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s judicial authorities may consider, inter alia, the value of the infringed good or service, measured by the market price, the suggested retail price, or other legitimate measure of value submitted by the right holder.

7.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except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at the conclusion of civil judicial proceedings concerning copyright or related rights infringement, patent infringement, or trademark infringement, that the prevailing party shall be awarded payment by the losing party of court costs or fees and, at least in proceedings concerning copyright or related rights infringement or wilful trademark counterfeiting, reasonable attorney's fees. Further,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at least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at the conclusion of civil judicial proceedings concerning patent infringement, that the prevailing party shall be awarded payment by the losing party of reasonable attorney's fees.

8.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concerning copyright or related rights infringement and trademark counterfeiting,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seizure of allegedly infringing goods, materials and implements relevant to the act of infringement, and, at least for trademark counterfeiting, documentary evidence relevant to the infringement.

9.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at the right holder's request, goods that have been found to be pirated or counterfeit shall be destroyed, except in exceptional circumstances[78];

(b)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at materials and implements that have been used in the manufacture or creation of such pirated or counterfeit goods be, without compensation of any sort, promptly destroyed or,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ithout compensation of any sort, disposed of outside the channels of commerce in such a manner as to minimise the risks of further infringements; and

(c) in regard to counterfeit trademarked goods, the simple removal of the trademark unlawfully affixed shall not be sufficient to permit the release of goods into the channels of commerce.

10.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concerning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infringer to provide, for the purposes of collecting evidence, any information that the infringer possesses or controls regarding any person or persons involved in any aspect of the infringement and

[75] A Party may satisfy the publication requirement in this paragraph by making the decision or ruling available to the public on the Internet.

[76] For greater certainty, nothing in this paragraph is intended to prescribe the type, format, and method of publication of the information a Party must publicise.

[77]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right holder" includes a federation or an association having the legal standing and authority to assert such rights, and also includes a person that exclusively has any one or mor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ncompassed in a given intellectual property.

[78] A Party may give effect to this subparagraph through, *inter alia*, the exercise of judicial discretion.

regarding the means of production or distribution channel of the infringing goods or services and to provide this information to the right holder or the judicial authorities in the proceedings[79].

1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a) impose sanctions, in appropriate cases, on a party to a civil judicial proceeding who fails to abide by valid orders issued by such authorities; and

(b) impose sanctions on parties to a civil judicial proceeding, their counsel, experts, or other persons subject to the court's jurisdiction, for violation of judicial order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produced or exchanged in a proceeding.

12.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concerning the acts described in Articles 13.5.9 and 13.5.10,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or award at least:

(a) provisional measures, including seizure of devices and products suspected of being involved in the proscribed activity;

(b) payment to the prevailing right holder at the conclusion of civil judicial proceedings of court costs and fees, and reasonable attorney's fees, by the party engaged in the proscribed conduct; and

(c) the destruction of devices and products found to be involved in the proscribed activity.

13.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concerning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a party to desist from an infringement, for the purposes of, *inter alia*, preventing infringing imports from entering the channels of commerce and preventing their exportation. Each Party may also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a party to a civil judicial proceeding to desist from the exportation of goods that are alleged to infringe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14. In the event that a Party's judicial or other competent authorities appoint technical or other experts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concerning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require that the parties to the litigation bear the costs of such experts, the Party should seek to ensure that such costs are closely related, *inter alia*, to the quantity and nature of work to be performed and do not unreasonably deter recourse to such proceeding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15. Each Party may permit us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to resolve civil dispute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visional Measures

16. Each Party's judicial authorities shall act on requests for provisional measures *inaudita altera parte* expeditiously.

17.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require the applicant, with respect to provisional measures, to provide any reasonably available evidence in order to satisfy themselves with a sufficient degree of certainty that the applicant's right is being infringed or that such infringement is imminent, and to order the applicant to provide a reasonable security or equivalent assurance set at a level sufficient to protect the defendant and to prevent abuse, and so as not to unreasonably deter recourse to such procedures.

Special Requirements Related to Border Measures

18.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ny right holder initiating procedures for its customs authorities to suspend release of suspected counterfeit or confusingly similar trademark goods, or pirated copyright goods[80] into free circulation is required to provide adequate evidence to satisfy the competent authorities that, under the law of the importing Party, there is *prima facie*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holder'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to supply sufficient information that may reasonably be expected to be within the right holder's knowledge to make the suspected goods reasonably recognisable by its customs authorities. The requirement to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shall not unreasonably deter recourse to these procedures.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he application to suspend the release of goods shall apply to all points of entry to its territory and remain applicable for a period of not less than one year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or the period that the good is protected by copyright or that the relevant trademark registration is valid, whichever is shorter.

19.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require a right holder initiating procedures to suspend the release of suspected counterfeit or confusingly similar trademark goods, or pirated copyright goods, to provide a reasonable security or equivalent assurance sufficient to protect the defendant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to prevent abuse.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he security or equivalent assurance shall not unreasonably deter recourse to these procedures. Each Party may provide that the security may be in the form of a bond conditioned to hold the importer or owner of the imported merchandise harmless from any loss or damage resulting from any suspension of the release of goods in the event the competent authorities determine that the article is not an infringing good.

20. Where its competent authorities have seized goods that have been determined to be counterfeit or pirated, in accordance with its laws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inform the right holder of the names and addresses of the exporter, consignor, importer or consignee, and provide to the right holder a description of the merchandise, the quantity of the merchandise and, if known,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merchandise.

2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customs authorities may initiate border measures *ex officio*[81] with respect to imported merchandise that is suspected of being counterfeit or confusingly similar trademark goods, or pirated copyright goods.

22.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goods that have been suspended from release by its customs authorities, and that have been forfeited as pirated or counterfeit, shall be destroyed, except in

[79] For greater certainty, this paragraph shall not apply to the extent that it would conflict with common law or statutory privileges, such as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or the right against self-incrimination.

[80]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18 through 24:

(a) "counterfeit trademark goods" means any goods, including packaging, bearing without authorisation a trademark that is identical to the trademark validly registered in respect of such goods, or that cannot be distinguished in its essential aspects from such a trademark, and that thereby infringes the rights of the owner of the trademark in question under the law of the country of importation; and

(b) "pirated copyright goods" means any goods that are copies made without the consent of the right holder or person duly authorised by the right holder in the country of production and that are made directly or indirectly from an article where the making of that copy would have constituted an infringement of a copyright or a related right under the law of the country of importation.

[81] For greater certainty, the Parties understand that *ex officio* action does not require a formal complaint from a private party or right holder.

exceptional circumstances. In regard to counterfeit trademark goods, the simple removal of the trademark unlawfully affixed shall not be sufficient to permit the release of the goods into the channels of commerce. In no event shall the competent authorities be authorised, except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o permit the exportation of counterfeit or pirated goods or to permit such goods to be subject to other customs procedures.

23. Where an application fee or merchandise storage fee is assessed in connection with border measures to enforce a trademark or copyright,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he fee shall not be set at an amount that unreasonably deters recourse to these measures.

24. Each Party shall provide the other Party, on mutually agreed terms, with technical advice on the enforcement of border measure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Parties shall promote bilateral and regional cooperation on these matters.

Criminal Procedures and Remedies

25.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to be applied at least in cases of wilful trademark counterfeiting or copyright or related rights piracy on a commercial scale. Each Party shall treat wilful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counterfeit or pirated goods as unlawful activities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82].

26. Further to paragraph 25, each Party shall provide:

(a) penalties that include sentences of imprisonment as well as monetary fines sufficient to provide a deterrent to future infringements, consistent with a policy of removing the infringer's monetary incentive. Each Party shall further encourage judicial authorities to impose those penalties at levels sufficient to provide a deterrent to future infringements;

(b)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seizure of suspected counterfeit or pirated goods, any related materials and implements used in the commission of the offense, any documentary evidence relevant to the offense, and any assets traceable to the infringing activity.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such orders need not individually identify the items that are subject to seizure, so long as they fall within general categories specified in the order;

(c)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among other measures, the forfeiture of any assets traceable to the infringing activity[83]; and

(d)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i) the forfeiture and destruction of all counterfeit or pirated goods; and

(ii) at least with respect to wilful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piracy and counterfeiting on a commercial scale, the forfeiture and/or destruction of materials and implements that have been predominantly used in the creation of pirated or counterfeit goods.

Each Party shall further provide that forfeiture and destruction under subparagraphs (c) and (d) shall occur without compensation of any kind to the defendant.

27.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to be applied against any person who, without authorisation of the holder of copyright or related rights in a cinematographic work, knowingly makes a copy of or transmits to the public the cinematographic work, from a performance of the cinematographic work, in an exhibition facility open to the public[84].

Special Measures against Repetitive Copyright Infringers on the Internet

28. Each Party shall provide measures to curtail repeated copyright and related right infringement on the Internet.

Limitations on Liability for Online Service Providers

29.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 of the TRIPS Agreemen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enforcement procedures that permit effective action against any act of copyright infringement covered by this Chapter, each Party shall provide:

(a) legal incentives for online service providers to cooperate with copyright[85] owners in deterring the unauthorised storage and transmission of copyrighted materials; and

(b) limitations in its law regarding the scope of remedies available against online service providers for copyright infringements that they do not control, initiate or direct, and that take place through systems or networks controlled or operated by them or on their behalf.

ARTICLE 13.10: UNDERSTANDINGS REGARDING CERTAIN PUBLIC HEALTH MEASURES

1.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the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adopted on 14 November 200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oha Declaration") by the Ministerial Conference of the WTO. In interpreting and implement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Article 13.8, the Parties are entitled to rely upon the Doha Declaration.

2. Each Party shall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and shall respect the *Decision of the WTO General Council of 30 August 2003* on paragraph 6 of the Doha Declaration, as well as the *Protocol amending the TRIPS Agreement*, done at Geneva on 6 December 2005.

ARTICLE 13.11: TRANSITIONAL PROVISIONS

1. Each Party shall give effect to this Chapter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Korea shall fully implement the obligations of Article 13.5.5 within two year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82] A Party may comply with the obligation in paragraph 25 in relation to exportation of counterfeit or pirated goods through its measures concerning distribution.

[83] For the purposes of Australia's obligations under this paragraph,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only be required to order the forfeiture of any assets traceable to an infringing activity in respect of at least offences defined as indictable offences under its law.

[84] A Party may satisfy the obligation in this paragraph by providing for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where the infringing conduct occurs on a commercial scale.

[85]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copyright includes related rights.

ARTICLE 13.12: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1. The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4 (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shall comprise officials of each Party.

2. The Committee shall:

(a) review, monitor and assess the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b) discuss and make recommendations in relation to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is Chapter;

(c) exchange information on legal and policy development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common names;

(d) discuss and seek resolution of any matter arising under this Chapter; and

(e) carry out any other functions as may be agreed by the Parties in order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3. The Committee shall meet every year, in principle, or as otherwise agreed. The date, location and agenda of each meeting will be jointly decided through consultations between the contact points.

4.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contact point shall be, unless otherwise notified:

(a) for Korea,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r its successor; and

(b) for Australia,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r its successor.

ARTICLE 13.13: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Articles 13.5 and 13.7, the following definitions shall apply with respect to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sations:

Broadcasting means the transmission to the public by wire or wireless means of sounds or sounds and images, or representations thereof, including wire or wireless transmission of encrypted signals where the means for decrypting are provided to the public by the broadcasting organisation or with its consent, but does not include transmissions over computer networks or any transmissions where the time and place of reception may be individually chosen by members of the public;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a performance or a phonogram means the transmission to the public by any medium, other than by broadcasting, of sounds of a performance or the sounds or the representations of sounds fixed in a phonogram;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 means any technology, device or component that, in the normal course of its operation, controls access to a protected work or other subject matter, or protects any copyright or related rights covered by this Chapter;

fixation means the embodiment of sounds, or of the representations thereof, from which they can be perceived, reproduced, or communicated through a device;

geographical indications means indications that identify a good a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Party, or a region or locality in that territory, where a given quality, reputation, or other characteristic of the good is essentially attributable to its geographical origin;

performers means actors, singers, musicians, dancers, and other natural persons who act, sing, deliver, declaim, play in, interpret, or otherwise perform literary or artistic works or expressions of folklore;

phonogram means the fixation of the sounds of a performance or of other sounds, or of a representation of sounds, other than in the form of a fixation incorporated in a cinematographic or other audiovisual work;

producer of a phonogram means the person who takes the initiative and has the responsibility for the first fixation of the sounds of a performance or other sounds, or the representations of sounds;

publication of a performance or a phonogram means the offering of copies of the performance or the phonogram to the public, with the consent of the right holder, and provided that copies are offered to the public in reasonable quantity;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means any information provided by right holders which identifies the protected work or other subject matter covered by this Chapter, the author or any other right holder, or information abou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use of the protected work or other subject matter covered by this Chapter, and any numbers or codes that represent such information. It applies when any of these items of information is associated with a copy of, or appears in connection with the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a protected work or other subject matter covered by this Chapter; and

WIPO means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CHAPTER 14
COMPETITION POLICY

ARTICLE 14.1: OBJECTIVES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implementing policies that promote competition, economic efficiency and consumer welfare, cooperating on matters covered by this Chapter, and curtailing anticompetitive practices which have the potential to restrict b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ARTICLE 14.2: PROMOTION OF COMPETITION

1. Each Party shall promote competition by addressing anticompetitive practices in its territory, including by maintaining competition laws, and adopting and enforcing such measures as it deems appropriate and effective to counter such practices.

2. Each Party shall maintain an authority or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enforcement of its competition laws. The enforcement policy of each competition authority shall include treating persons of the other Party no less favourably than persons of the Party in like circumstances.

ARTICLE 14.3: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S

1. Any measures taken by a Party to proscribe anticompetitive practices and the enforcement actions taken pursuant to those measures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transparency, timeliness, non-discrimination, comprehensiveness and procedural fairness.

2.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ll businesses are subject to competition laws in force in its respective territory.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a Party may exempt specific businesses or sectors from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s, provided that such exemptions are transparent and are undertaken on the grounds of public policy or public interest.

ARTICLE 14.4: COMPETITIVE NEUTRALITY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at governments at all levels in their territories do not provide any competitive advantage to any state enterprise in its business activities as a result of it being a state enterprise. This Article shall apply to the business activities of state enterprises and not to their non-business, non-commercial activities. The application of this Article shall not obstruct the performance of the particular public tasks assigned to them.

ARTICLE 14.5: COOPERATION

1.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to further the promotion of competition and the curtailment of anticompetitive practices.

2. The Parties may cooperate and coordinate, as appropriate, in developing and enforcing competition laws and policies, including through the exchange of information, notification, technic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on cross-border enforcement matters, utilising their existing mechanisms for cooperation including the Cooperation Arrangement between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ir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Laws.

ARTICLE 14.6: NOTIFICATIONS

1. Each Party shall, through its competition authority, notify the competition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of an enforcement activity if it considers that such enforcement activity may substantially affect important interests of the other Party.

2. The notification shall take place at an early stage of the enforcement activity, provided that it is not contrary to the laws of the Parties and does not affect any investigation being carried out.

ARTICLE 14.7: CONSULTATIONS

1. On request of a Party, the Parties shall consult with a view to curtailing particular anticompetitive practices that affect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2.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limit the discretion of the competition authority of a Party to decide whether to take action following consultations.

ARTICLE 14.8: CROSS-BORDER CONSUMER PROTECTION

The Parties shall promot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on matters related to consumer protection, including in the enforcement of their consumer protection laws.

ARTICLE 14.9: DISPUTE SETTLEMENT

Neither Party shall have recourse to dispute settlement under this Agreement for any matter arising under this Chapter.

ARTICLE 14.10: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anticompetitive practices means business conduct or transactions that adversely affect competition, such as:

(a) anticompetitive agreements or arrangements between enterprises;

(b) abuse of dominance; and

(c) anticompetitive mergers and acquisitions or other anticompetitive structural combinations of enterprises;

competition laws means:

(a) for Korea,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its implementing regulations, including their amendments and replacements; and

(b) for Australia, the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and any regulations relating to Parts IV and XIA; and provisions of other Parts in so far as they relate to Part IV, but not including Part X, including their amendments and replacements; and

consumer protection laws means:

(a) for Korea,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the *Fair Labelling and Advertising Act* and their implementing regulations, including their amendments and replacements; and

(b) for Australia, the Australian Consumer Law, and any regulations relating to the Australian Consumer Law, in the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including their amendments and replacements.

CHAPTER 15
ELECTRONIC COMMERCE

ARTICLE 15.1: OBJECTIVES

The Parties recognise the economic growth and opportunity that electronic commerce provides, the importance of avoiding barriers to its use and development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WTO Agreement to measures affecting electronic commerce.

ARTICLE 15.2: ELECTRONIC SUPPLY OF SERVICES

The Parties affirm that measures affecting the supply of a service delivered or performed electronically are subject to the obligations contained in the relevant provisions of Chapters 7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8 (Financial Services) and 11 (Investment), subject to any exceptions or non-conforming measures set out in this Agreement that are applicable to such obligations.

ARTICLE 15.3: CUSTOMS DUTIES

Neither Party shall impose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5.4: DOMESTIC REGULATION

1.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measures regulating electronic commerce taking into account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and, as appropriate, other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2.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a) minimise the regulatory burden on electronic commerce; and

(b) ensure that its measures regulating electronic commerce support industry-led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ARTICLE 15.5: ELECTRONIC AUTHENTICATION AND ELECTRONIC SIGNATURES

1.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measures regulating electronic authentication that permit parties to an electronic transaction:

(a)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authentication methods for that transaction; and

(b) to have the opportunity to establish before judicial or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at their electronic transaction complies with legal requirements with respect to authentication.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prescribed by a Party's laws and regulations, a Party may require that, for transactions where a high degree of reliability and security is required, such as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the method of authentication meet certain security standards or be certified by an authority accredited in accordance with the Party's laws or policies.

3. The Parties shall work towards the mutual recognition of electronic signatures issued by either Party, based on internationally accepted standards.

4. The Parties shall work towards interoperability of electronic signatures issued by either Party.

ARTICLE 15.6: ONLINE CONSUMER PROTECTION

1.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measures to protect consumers engaged in electronic commerce, which are at least equivalent to those provided for consumers engaged in other forms of commerce.

2.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between their respective national consumer agencies on activities related to cross-border electronic commerce in order to enhance consumer welfare.

ARTICLE 15.7: PAPERLESS TRADING

1.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make trade administration documents available to the public in electronic form.

2.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accept electronic trade administration documents as the legal equivalent of the paper version of those documents.

3. In developing initiatives which provide for the use of paperless trading, each Party shall take into account the methods agreed by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RTICLE 15.8: ONLINE PERSONAL DATA PROTECTION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measures which ensure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data of the users of electronic commerce. In the development of personal data protection standards, each Party shall take into accoun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of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RTICLE 15.9: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1.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adopt or maintain measures to regulate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to minimise unsolicited spam and telemarketing.

2. The Parties shall, subject to their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cooperate bilaterally and in international fora regarding the regulation of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Areas of cooperation may include, but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exchange of information on technical, educational and policy approaches to spam and telemarketing.

ARTICLE 15.10: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electronic authentication means the process or act of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a party to an electronic communication or transaction;

electronic signature means information in the form of electronic data attached to, or logically combined with, an electronic record for the purpose of utilising it to identify the signer and to prove that the signer has signed the electronic record;

electronic transmissions means transmissions made using any electromagnetic or photonic means;

personal data means any information about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individual;

trade administration documents means forms that a Party issues or controls and that must be completed by or for an importer or exporter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goods; and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 means an electronic message[86] (including a voice service) which is sent for commercial purposes to an electronic address without the consent of the recipient or against the explicit rejection of the recipient, using an Internet carriage service or other telecommunications service.

[86] For the purpose of this definition, "electronic message" may include a facsimile message.

CHAPTER 16
COOPERATION

Section A: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ARTICLE 16.1: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Section is to facilitate bilateral cooperation and explore new cooperative activities between the Parties in the fields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building on existing cooperative relationships at the bilateral, regional and multilateral level, in support of mutual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ARTICLE 16.2: SCOPE

The Parties shall cooperate in areas which may include:

(a) innov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b) agriculture, including primary and processed commodities;

(c) fisheries and aquaculture;

(d) forestry;

(e) sanitary and phytosanitary matters;

(f) security of food supply; and

(g) any other areas of cooperation as may be identified and agreed by the Parties.

ARTICLE 16.3: COOPERATIVE ACTIVITIES

The Parties shall promote cooperative activities by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the fields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Cooperative activities may include:

(a) information exchanges, including exchanging views on relevant policies;

(b) technical cooperation;

(c) joint research programs and projects;

(d) exchanges of experts, researchers, students and relevant professionals;

(e) conferences, seminars and workshops;

(f) exchanging views on matters in relation to relevant regional and international bodies;

(g) collaborative training exercises, in particular for students and graduates from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e fields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h) promotion of private sector cooperation;

(i) 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mutual investment opportunities;

(j) study visits to farms and related production centres; and

(k) cooperating in any other fields as may be identified and agreed by the Parties.

ARTICLE 16.4: INNOV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1. The Parties, recognising the importance of innov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to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shall endeavour, as appropriate, to promote cooperative activities in relevant fields. These activities may includ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

(a) sustainable resource management;

(b) water management and water use efficiency;

(c)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itigation;

(d) mitigation of climate-related extremes;

(e) animal husbandry practices including reproductive technologies, nutrition, and livestock identification and traceability systems;

(f) productivity enhancements in agriculture, fisheries, forestry and food;

(g) biosecurity, including farm biosecurity;

(h) animal and plant disease research;

(i) biotechnology;

(j) food safety; and

(k) any other fields of innov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as may be identified and agreed by the Parties.

2.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enhance cooperative partnerships between their research organisations.

ARTICLE 16.5: AGRICULTURE

The Parties, recognising the importance of promoting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Korean and Australian farmers and agribusinesses, shall undertake cooperative activities on any agricultural matter the Parties agree to be appropriate, including in relation to:

(a) agricultural industries, including livestock production and processing industries, cropping, horticulture, irrigated agriculture and natural fibre production;

(b) agricultural reforms and policies;

(c) agricultural economics;

(d) generational change and farm succession planning;

(e) rural development;

(f) peri-urban and urban agriculture;

(g)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 economics and management;

(h) nutrition, including the agronomic and genetic enhancement of plant, animal and human nutrition;

(i) sustainable and conservation farming techniques; and

(j) any other agricultural matter as may be identified and agreed by the Parties.

ARTICLE 16.6: FISHERIES AND AQUACULTURE

1.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cooperate, as appropriate, in the field of fisheries and aquaculture. Areas of cooperation may include exchange of information regarding fisheries, aquaculture and fish resources, including in relation to:

(a) by catch and the minimisation of adverse impacts of fishing on the marine environment;

(b) marine pests;

(c) recreational fishing;

(d)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marine ecosystems; and

(f) fisheries economics and resource management.

2. Other areas of cooperation may be identified and agreed by the Parties. To this end, the Parties shall make their best efforts to establish a fisheries cooperation arrangement within three year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16.7: FORESTRY

The Parties, recognising the current high level of bilater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forestry, shall endeavour to explore opportunities for further cooperation. Areas of cooperation may include:

(a) promotion of trade in timber resources including logs and woodchips;

(b) development, utilis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c)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forestry resources;

(d) forest fire management and control;

(e) forest thinning;

(f) forestry pest control;

(g) farm forestry;

(h) combating illegal logging and the associated trade; and

(i) any other areas of cooperation as may be identified and agreed by the Parties.

ARTICLE 16.8: SANITARY AND PHYTOSANITARY MATTERS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cooperate in the areas of human, animal or plant health and food safety. Areas of cooperation may include:

(a) regional animal and plant disease surveillance;

(b) animal disease, plant pest and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c) detection methods for pathogenic micro-organisms in food;

(d) regulation and control of agri-chemical and veterinary medicine residues and other food safety issues; and

(e) any other human, animal or plant health and safety issues of mutual interest.

ARTICLE 16.9: SECURITY OF FOOD SUPPLY

1.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ion and bilateral trade for the maintenance of a stable and reliable food supply and the fulfilment of food security objectives.

2. The Parties shall explore opportunities to cooperate in the area of global food security, including through relevant regional and international fora.

3. Recognising the important role that two-way trade and investment play in achieving long-term food security, the Parties shall, as appropriate, endeavour to promote and facilitate productive and mutually beneficial trade and investment in agriculture and food.

4. In the event of a severe and sustained disruption to supply of staple foods and feed grain, the Parties shall enter into consultations, on request of a Party, through appropriate cooperative mechanisms, which may include the Committee on Agricultural Cooperation, to exchange information on, and to examine the factors relevant to, the situation.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take any appropriate actions available to them that would contribute to the resolution of the situation through such consultations.

5. In the case of any introduction of a prohibition or restriction on the exportation or sale for export of any agricultural goods produced on a farm established in its territory by a person of the other Party, the Parties shall enter into consultations with a view to giving due consideration at the Committee on Agricultural Cooperation to the effects of such prohibition or restriction and relevant remedies, prior to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any export prohibition or restriction. When an export prohibition or restriction is taken, the Parties shall enter into consultation, on request of a Party, with a view to early recovery of the open market and uninterrupted supply chains.

6. Each Party affirms its commitment to high levels of safety in agricultural exports and recognises consumer demand for high quality food.

ARTICLE 16.10: CONTACT POINTS

1. Each Party shall designate a contact point relating to the operation of this Sec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contact point shall be:

(a) for Korea,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its successor; and

(b) for Australia,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or its successor.

2. The contact points shall:

(a) facilitat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relating to this Section;

(b) coordinate the Committee on Agricultural Cooper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6.11; and

(c) facilitate any other communications between the Parties on any matter covered by this Section.

ARTICLE 16.11: COMMITTEE ON AGRICULTURAL COOPERATION

1. The Committee on Agricultural Cooperatio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4 (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shall comprise officials of each Party, including those responsible for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2.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 may include:

(a) reviewing, monitoring and assessing the implementation of this Section;

(b) making recommendations regarding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is S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strategic priorities of the Parties;

(c) discussing, considering and, as appropriate, resolving any matter arising under this Section; and

(d) any other functions as may be agreed by the Parties.

3. The Committee shall, in principle, meet every year or as otherwise agreed. The date, location, and agenda of each meeting shall be jointly decided through consultations between the contact points.

ARTICLE 16.12: RESOURCES

1. With the aim of contributing to the fulfilment of the objective of this Section, and recognising that cooperative activities as envisaged in the Section will be able to be implemented effectively only when financed with adequate resources, the Parties shall provide, within the limits of their own capacities and through their own channels, adequate resources to support such cooperative activities.

2. Additional details regarding the provision of resources for the specific cooperative activities that the Committee on Agricultural Cooperation identifies and develops as part of its annual work program shall be arranged by the Committee on Agricultural Cooperation.

3. Recognising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ccess to stable available resources, the Committee on Agricultural Cooperation shall consider options for securing joint regular funding that could be utilised in implementing its cooperative activities.

Section B: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ARTICLE 16.13: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Section is to affirm and enhance the stable and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in the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sector.

ARTICLE 16.14: COOPERATIVE ACTIVITIES

1. The Parties shall promote, subject to their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cooperative activities by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the field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2. Cooperative activities may include:

(a) joint activities in areas such as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exploration, extraction, processing, transportation and use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including energy efficiency measures and measures relating to climate change;

(b) exchanging views on policies relevant to the exploration, extraction, processing, transportation and use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including energy efficiency measures and measures relating to climate change;

(c) enhanced academic and scientific exchanges relating to the exploration, extraction, processing, transportation and use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including energy efficiency measures and measures relating to climate change; and

(d) visits and exchanges between the Parties, such as by relevant experts, technicians and leaders in the public, academic and private sectors.

ARTICLE 16.15: 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TRADE AND INVESTMENT

1.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promote, as appropriate, mutually beneficial trade and investment activities in the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sector.

2. Regarding the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sector, the Parties may discuss effective ways to:

(a) encourage investment relating to the exploration, extraction, processing, transportation and use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including in emerging technologies and renewable energy;

(b) promote the provision and exchange of investment information including information on their respective laws, regulations and policies;

(c) encourage and support investment promotion activities of each Party; and

(d) maintain and foster stable, equitable, favourable and transparent conditions for investors.

3. Notwithstanding Article 11.2 (Relation to Other Chapters), in the event of any inconsistency between this Chapter and Chapter 11 (Investment), Chapter 11 shall prevail to the extent of the inconsistency.

ARTICLE 16.16: EXCHANGE OF INFORMATION

The Parties shall exchange information relevant to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This exchange of information may include:

(a) geological data or information about distributions, deposits and development plans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b) information on investment related to the exploration, extraction, processing, transportation and use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c) information on investment opportunities such as tenders,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mining projects;

(d) information on respective laws, regulations and policies relating to the exploration, extraction, processing, transportation and use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including information related to investment;

(e) information on mine reclamation technology,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other resource management regulations or practices;

(f) information on current and future trends in the coal, oil, gas, electricity and renewable energy industries;

(g) information on current and planned infrastructure development related to the exploration, extraction, processing, transportation and use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and

(h)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as agreed by the Parties.

ARTICLE 16.17: SECURITY IN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1.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security and the role that trade, investment and cooperation play in achieving long-term security.

2. In the event of a severe and sustained disruption to supply of a major energy and mineral resource, the Parties shall enter into consultations, on request of a Party, through appropriate cooperative mechanisms, which may include the Committee on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Cooperation, to exchange information and to explore any appropriate actions available to them that would contribute to the resolution of the situation.

ARTICLE 16.18: CONTACT POINTS

1. Each Party shall designate a contact point relating to the operation of this Sec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contact point shall be:

(a) for Korea,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r its successor; and

(b) for Australia, the Department of Industry, or its successor.

2. The contact points shall:

(a) facilitat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relating to this Section;

(b) coordinate the Committee on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Cooper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6.19; and

(c) facilitate any other communications between the Parties on any matter covered by this Section.

ARTICLE 16.19: COMMITTEE ON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COOPERATION

1. The Committee on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Cooperatio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4 (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shall comprise officials of each Party, including those responsible for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2.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 may include:

(a) reviewing, monitoring and assessing the implementation of this Section;

(b) making recommendations regarding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is S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strategic priorities of each Party;

(c) discussing any matter arising under this Section; and

(d) any other functions as agreed by the Parties.

3. The Parties may, by mutual consent, invite representatives of entities with the necessary expertise relevant to the issues to be discussed to participate in the Committee.

4. The Committee shall, in principle, meet every year or as otherwise agreed. The date, location, and agenda of each meeting shall be jointly decided through consultations between the contact points.

ARTICLE 16.20: RESOURCES

1. With the aim of contributing to the fulfilment of the objective of this Section, and recognising that cooperative activities as envisaged in the Section will be able to be implemented effectively only when financed with adequate resources, the Parties shall provide, within the limits of their own capacities and through their own channels, adequate resources to support such cooperative activities.

2. Additional details regarding the provision of resources for the specific cooperative activities that the Committee on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identifies and develops as part of its annual work program shall be arranged by the Committee on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3. Recognising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ccess to stable available resources, the Committee on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shall consider options for securing joint regular funding that could be utilised in implementing its cooperative activities.

CHAPTER 17
LABOUR

ARTICLE 17.1: GENERAL PRINCIPLES

1. Each Party affirms its obligations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LO") and its commitments under the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and its Follow-up (1998)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LO Declaration").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adopt or maintain in its laws, regulations, policies and practices the following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s stated in the ILO Declaration:

(a)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effectiv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b)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c) the effective abolition of child labour; and

(d)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2. Each Party shall respect the other Party's right to establish its own policies and national priorities and to adopt and administer its own labour laws, regulations and practices in accordance with those policies and priorities.

3. Neither Party shall fail to enforce its labour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a) those it adopts or maintain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nd

(b) those adopted to implement ILO instruments that it has ratified,

through a sustained or recurring course of action or inaction,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Each Party retains the right to exercise reasonable discretion with respect to investigatory, prosecutorial, regulatory, and compliance matters in the enforcement of its labour laws and to make bona fide decisions regarding the allocation of resources to enforcement.

4.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ensure that it does not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or offer to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its labour laws, regulations, policies and practices in a manner that weakens or reduces adherence 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s an encouragement for trade with the other Party, or as an encouragement for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or retention of an investment in its territory.

5. Each Party recognises that it is inappropriate to use its labour laws, regulations, practices or policies for trade protectionist purposes.

ARTICLE 17.2: PROCEDURAL GUARANTEES

Any matter relating to this Chapter which arises under Chapter 19 (Transparency) shall be subject to Article 17.4.

ARTICLE 17.3: INSTITUTIONAL MECHANISM

Contact Point

1. Each Party shall designate a contact point for labour matters to facilitate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ties.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the contact point shall be, unless otherwise notified:

(a) for Korea,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r its successor;

(b) for Australia, the Department of Employment, or its successor.

Ad hoc Committee

2. A Party may request the establishment of an *ad hoc* Committee to discuss any matter related to this Chapter by delivering a written request to the contact point of the other Party and the other Party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request. The *ad hoc* Committee shall comprise appropriate senior officials from the labour ministry and/or other appropriate agencies and ministries of each Party. The *ad hoc* Committee shall discuss the matter at a time and place agreed to by the Parties[87].

ARTICLE 17.4: CONSULTATIONS

1. A Party may request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y regarding any matter arising under this Chapter by delivering a written request to the contact point of the other Party. Consultations shall commence promptly after a Party delivers a request for consultations to the contact point of the other Party. The Parties shall make every attempt to arrive at a mutually satisfactory resolution of the matter.

2. If consultations under paragraph 1 fail to resolve the matter, and a Party deems that the matter needs further discussion, that Party may request the establishment of an *ad hoc* Committee under Article 17.3.2 to consider the matter. Where the establishment of such an *ad hoc* Committee is requested under this paragraph, that *ad hoc*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without undue delay and shall endeavour to agree on a resolution of the matter.

ARTICLE 17.5: COOPERATION

1. Recognising the importance of cooperating on trade-related aspects of labour policie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commit to enhancing close cooperation through cooperative activities in areas of mutual interest as set out in paragraphs 2 and 3.

2. Areas of cooperation may include, but should not be limited to, labour-management relations, working condition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vocational training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labour statistics.

3. Cooperative activities may include, but should not be limited to, exchanges of people and information, cooperation in relevant regional and international fora[88], conferences and seminars, development of joint research or collaborative projects, and funding of technical cooperation within the ILO with the aim of raising labour standards in the Asia-Pacific region, taking into account each Party's available resources.

ARTICLE 17.6: DISPUTE SETTLEMENT

Neither Party shall have recourse to dispute settlement under this Agreement for any matter arising under this Chapter, including such matters as referred to in Article 17.2.

[87] Where convenient, the *ad hoc* Committee may meet at meetings of the ILO or other appropriate international bodies at which both Parties are represented.

[88] Relevant regional and international fora include ILO government groups such as the Asia-Pacific Government Group and Industrialised Market Economies Group, and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HAPTER 18
ENVIRONMENT

ARTICLE 18.1: LEVELS OF PROTECTION

1. Recognising the right of each Party to establish its own level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its own environmental development priorities, and to adopt or modify accordingly its environmental laws, regulations and policies,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ensure that its laws, regulations and policies provide for and encourage high level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hall endeavour to continue to improve its respective level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cluding through such environmental laws, regulations and policies.

2. Each Party recognises that it is inappropriate to use environmental laws, regulations or policies for trade protectionist purposes.

ARTICLE 18.2: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to which both Parties are party play an important role, globally and domestically, in protecting the environment and that their respective implementation of these agreements is critical to achieving the environmental objectives of these agreements. Accordingly, the Parties shall continue to seek means to enhance the mutual supportiveness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d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to which both Parties are party.

2. To this end, the Parties shall consult, as appropriate, with respect to negotiations on trade-related environmental issues of mutual interest.

ARTICLE 18.3: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S

1. Neither Party shall fail to enforce its environmental laws, regulations and policies, through a sustained or recurring course of action or inaction,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Each Party retains the right to exercise reasonable discretion with respect to investigatory, prosecutorial, regulatory, and compliance matters in the enforcement of its environmental laws, regulations and policies and to make bona fide decisions regarding the allocation of resources to enforcement.

2. Each Party recognises that it is inappropriate to encourage trade or investment by weakening or reducing the protections afforded in its environmental laws, regulations and policies. Accordingly,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ensure that it does not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or offer to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such laws, regulations and policies in a manner that weakens or reduces the protections afforded in those laws, regulations and policies as an encouragement for trade with the other Party, or as an encouragement for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or retention of an investment in its territory.

ARTICLE 18.4: TRADE FAVOURING ENVIRONMENT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facilitate and promote trade and investment in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environmental technologies, sustainable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t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through addressing related non-tariff barriers.

ARTICLE 18.5: PROCEDURAL GUARANTEES

Any matter relating to this Chapter which arises under Chapter 19 (Transparency) shall be subject to Article 18.7.

ARTICLE 18.6: INSTITUTIONAL MECHANISM

Contact Point

1. Each Party shall designate a contact point for environmental matters to facilitate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ties.

Ad hoc Committee

2. A Party may request the establishment of an *ad hoc* Committee to discuss any matter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by delivering a written request to the contact point of the other Party and the other Party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request. The *ad hoc* Committee shall comprise appropriate senior officials from the environmental ministry and/or other appropriate agencies and ministries of each Party. The *ad hoc* Committee shall discuss the matter at a time and place agreed to by the Parties[89].

ARTICLE 18.7: CONSULTATIONS

1. A Party may request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y regarding any matter arising under this Chapter by delivering a written request to the contact point of the other Party. Consultations shall commence promptly after a Party delivers a request for consultations to the contact point of the other Party. The Parties shall make every attempt to arrive at a mutually satisfactory resolution of the matter.

2. If consultations under paragraph 1 fail to resolve the matter, and a Party deems that the matter needs further discussion, that Party may request the establishment of an *ad hoc* Committee under Article 18.6.2 to consider the matter. Where the establishment of such an *ad hoc* Committee is requested under this paragraph, that *ad hoc*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without undue delay and shall endeavour to agree on a resolution of the matter.

ARTICLE 18.8: COOPERATION

1. Recognising the importance of cooperating on trade-related aspects of environmental policie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commit to enhancing close cooperation through cooperative activities in areas of mutual interest as set out in paragraphs 2 and 3.

2. Areas of cooperation may include, but should not be limited to, trade impact of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s, trade-related environment issues and trade-related aspects of biodiversity.

3. Cooperative activities may include, but should not be limited to, exchanges of people and information, sharing information on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trade agreements, cooperation in relevant regional and international fora, conferences and seminars, and development of joint research or collaborative projects.

[89] Where convenient, the *ad hoc* Committee may meet at meetings of appropriate international bodies at which both Parties are represented.

ARTICLE 18.9: DISPUTE SETTLEMENT

Neither Party shall have recourse to dispute settlement under this Agreement for any matter arising under this Chapter, including such matters as referred to in Article 18.5.

CHAPTER 19
TRANSPARENCY

ARTICLE 19.1: PUBLICATION

1.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laws, regulations, procedures and administrative rulings of general application respecting any matter covered by this Agreement are promptly published, including on the Internet where feasible, or otherwise made available in such a manner as to enable interested persons and the other Party to become acquainted with them.

2. To the extent possible, each Party shall:

(a) publish in advance any such laws, regulations, procedures and administrative rulings of general application that it proposes to adopt; and

(b) provide interested persons and the other Party a reasonable opportunity to comment on such proposed measures.

ARTICLE 19.2: PROVISION OF INFORMATION

On request of the other Party, a Party shall promptly provide information and respond to questions pertaining to any actual or proposed measure that the requesting Party considers might affect the operation of this Agreement, regardless of whether the requesting Party has been previously notified of that measure.

ARTICLE 19.3: ADMINISTRATIVE PROCEEDINGS

1.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ll laws, regulations, procedures, and administrative rulings of general applic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are administered in a consistent, impartial, objective and reasonable manner.

2. With a view to administering in a consistent, impartial, objective and reasonable manner its laws, regulations, procedures and administrative rulings of general application with respect to any matter covered by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ensure, in its administrative proceedings applying these measures to particular persons, goods or services of the other Party in specific cases that it:

(a) provides wherever possible, persons of the other Party that are directly affected by a proceeding reasonable notice, in accordance with its procedures, when a proceeding is initiated, including a description of the nature of the proceeding, a statement of the legal authority under which the proceeding is initiated, and a general description of any issues in controversy;

(b) affords such persons a reasonable opportunity to present facts and arguments in support of their positions prior to any final administrative action, when time, the nature of the proceeding and the public interest permit; and

(c) follows its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its law.

ARTICLE 19.4: REVIEW AND APPEAL

1. Each Party shall establish or maintain judicial, quasi-judicial, or administrative tribunals or procedures for the purposes of the prompt review and, where warranted, correction of final administrative actions regarding matters covered by this Agreement. Such tribunals shall be impartial and independent of the office or authority entrusted with administrative enforcement and shall not have any substantial interest in the outcome of the matter.

2.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n any such tribunals or procedures, the parties to the proceeding are provided with the right to:

(a) a reasonable opportunity to support or defend their respective positions; and

(b) a decision based on the evidence and submissions of record or, where required by the law of the Party, the record compiled by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3. Each Party shall ensure, subject to appeal or further review as provided in its law, that such decision shall be implemented by, and shall govern the practice of, the office or authority with respect to the administrative action at issue.

ARTICLE 19.5: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administrative ruling of general application means an administrative ruling or interpretation that applies to all persons and fact situations that fall generally within its ambit and that establishes a norm of conduct but does not include:

(a) a determination or ruling made in an administrative or quasi-judicial proceeding that applies to a particular person, good, or service of the other Party in a specific case; or

(b) a ruling that adjudicates with respect to a particular act or practice.

CHAPTER 20
DISPUTE SETTLEMENT

ARTICLE 20.1: COOPERATION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agree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nd shall make every attempt through cooperation to arrive at a mutually satisfactory resolution of any matter that might affect its operation.

ARTICLE 20.2: SCOPE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or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is Chapter shall apply with respect to the avoidance or settlement of all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wherever a Party considers that:

(a) a measure of the other Party is inconsistent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b) the other Party has otherwise failed to carry out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or

(c) a benefit the Party could reasonably have expected to accrue to it under Chapter 2 (Trade in Goods), 3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4 (Customs Administration and Trade Facilitation), 7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or 12 (Government Procurement), is being nullified or impaired as a result of a measure that is not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ARTICLE 20.3: CONTACT POINTS

1. Each Party shall designate a contact point to facilitate communications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any dispute initiated under this Chapter.

2. Any request, notification, written submission or other document made in accordance with this Chapter shall be delivered to the other Party through its designated contact point.

ARTICLE 20.4: CHOICE OF FORUM

1. Recourse to the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of this Chapter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any action in the WTO framework, including dispute settlement action.

2. However, where a Party has, with regard to a particular measure, initiated a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 either under this Agreement or under the WTO Agreement, it shall not initiate a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 regarding the same measure in the other forum until the first proceeding has been concluded or terminated by the complaining Party. In addition, where a Party has initiated a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 either under this Agreement or under the WTO Agreement to seek redress of an obligation which is identical or substantially identical under the two Agreements, it shall not initiate a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 to seek redress of the identical or substantially identical obligation in the other forum until the first proceeding has been concluded or terminated by the complaining Party.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a Party may initiate a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 in the other forum if the first forum selected fails for procedural or jurisdictional reasons to make findings on the claim.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2 and 3:

(a)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under the WTO Agreement are deemed to be initiated by a Party's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under Article 6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in Annex 2 of the WTO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SU") and are deemed to be concluded when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SB") adopts the Panel's report, and the Appellate Body's report, as the case may be, under Articles 16 and 17.14 of the DSU; and

(b)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under this Chapter are deemed to be initiated by a Party's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 dispute settlement panel under Article 20.8 and are deemed to be concluded when the panel present a final report to the Parties under Article 20.11.

ARTICLE 20.5: RULES OF INTERPRETATION

Any panel shall interpret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customary rules of interpretation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cluding as reflected in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Where an obligation under this Agreement is identical or substantially identical to an obligation under the WTO Agreement, the panel shall adopt an interpretation which is consistent with any relevant interpretation established in rulings of the DSB. The rulings of the panel cannot add to or diminish the rights and obligations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ARTICLE 20.6: CONSULTATIONS

1. Either Party may request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y with respect to any matter described in Article 20.2 by delivering written notification to the other Party. The complaining Party shall set out the reasons for the request, including identification of the measure at issue and an indication of the legal basis for the complaint, and any other issue of concern. The other Party shall reply promptly to the request and enter into consultations.

2. Each Party shall:

(a)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in the consultations to enable a full examination of the matter subject to consultations, including how the measure at issue might affect the operation of this Agreement; and

(b) treat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exchanged in the course of consultations on the same basis as the Party providing the information.

ARTICLE 20.7: REFERRAL TO THE JOINT COMMITTEE

1. If the Parties fail to resolve a matter within 60 days of the delivery of a request for consultations under Article 20.6, either Party may refer the matter to the Joint Committee by delivering written notification to the other Party.

2. The Joint Committee shall promptly convene and endeavour to resolve the matter.

ARTICLE 20.8: ESTABLISHMENT OF PANEL

1. If the matter has not been resolved within 60 days of the delivery of a notification described in Article 20.7, or within such other period as the Parties may agree, the complaining Party may request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to consider the matter by delivering written notification to the other Party. The complaining Party shall set out the reasons for the request, including identification of the specific measure at issue and a brief summary of the factual and legal basis for the complaint sufficient to present the problem clearly.

2. Within five days of the date of delivery of the written notification requesting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as provided in paragraph 1, the Parties shall enter into consultations with a view to reaching agreement on the procedures for selecting a panel. If the Parties are unable to reach agreement on the procedures for selecting the panel within 15 days of the date of delivery of the written notification referring a matter to a panel as provided in paragraph 1, either Party may at any time thereafter notify the other Party that it wishes to use the procedures set forth in subparagraphs (a) and (b). Where such a notification is made, the panel shall be composed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s (a) and (b):

(a) the panel shall have three panellists. Within 30 days of the date of delivery of the written notification requesting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as provided in paragraph 1, each Party shall appoint one panellist, who may be its national, and provide to the other Party a list of up to three nominees for appointment as the third panellist who shall be the chair of the panel. The Parties shall then consult with each other with the objective of appointing the third panellist, taking into account the lists of nominees; and

(b) if all of the panellists have not been appointed within 45 days of the date of delivery of the written notification requesting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as provided in paragraph 1, any of the remaining panellists shall be appointed on request of either Party by random drawing from the lists of nominees for appointment as chair or as a regular panellist.

3. If a panellist appointed under this Article resigns or becomes unable to act, a successor panellist shall be appointed in the same manner as prescribed for the appointment of the original panellist and shall have all the powers and duties of the original panellist. The work of the panel shall be suspended during the appointment of the successor panellist.

4. The date of establishment of the panel shall be the date the last panellist i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5. Individuals appointed to a panel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shall:

(a) be chosen strictly on the basis of objectivity, reliability, and sound judgment;

(b) have expertise or experience in law, international trade, other matters covered by this Agreement or the resolution of disputes arising under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c) be independent of, and not be affiliated with or take instructions from, either Party;

(d) not have dealt with the matter in any capacity;

(e) disclose to the Parties information which may give rise to justifiable doubts as to their independence or impartiality; and

(f) comply with the code of conduct set out in Annex 20-A.

6.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the chair shall not be a national of either Party.

7. Where a panel is reconvened under Article 20.13.4, 20.14.5, 20.14.6 or 20.15.1 the reconvened panel shall, where possible, have the same panellists as in the original panel. If the panel cannot be reconvened with all of its original panellists, the procedures for selection of the panellists set out in paragraphs 2 through 6 shall apply.

ARTICLE 20.9: FUNCTIONS OF PANELS

1. A panel shall make an objective assessment of the matter before it, including an objective assessment of:

(a) the facts of the case;

(b) the applicability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cited by the Parties; and

(c) whether:

(i) the measure at issue is inconsistent with the obligations of this Agreement;

(ii) a Party has otherwise failed to carry out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or

(iii) the measure at issue is causing nullification or impairment in the sense of Article 20.2(c).

2.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within 20 days of the date of the delivery of the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anel, the panel's terms of reference shall be:

"To examine, in the light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cited by the Parties, the matter referenced in the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anel, to make findings, determinations, and, if applicable, recommendations as provided in Articles 20.11.1 and 20.11.2 and to present the written reports referred to in Articles 20.11.1 and 20.11.4."

3.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a panel reconvened under Article 20.13.4, 20.14.5, 20.14.6 or 20.15.1.

ARTICLE 20.10: RULES OF PROCEDURE

1.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and subject to paragraph 3, the panel shall follow the model rules of procedure set out in Annex 20-B.

2. The panel may, after consulting with the Parties, adopt additional rules of procedure not inconsistent with the model rules.

3. A panel reconvened under Article 20.13.4, 20.14.5, 20.14.6 or 20.15.1 may establish its own procedures, in consultation with the Parties, which do not conflict with this Chapter or the model rules of procedure.

ARTICLE 20.11: PANEL REPORT

1.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the panel shall, within 180 days of the date the chair is appointed, present to the Parties an initial report containing its findings on the facts of the case and on the applicability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its determination as to:

(a) whether

(i) the measure at issue is inconsistent with the obligations of this Agreement;

(ii) a Party has otherwise failed to carry out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or

(iii) the measure at issue is causing nullification or impairment in the sense of Article 20.2(c); and

(b) any other issue of concern that the Parties have jointly requested that the panel address, as well as the reasons for its findings and determinations.

2. The panel shall base its report o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e submissions and arguments of the Parties and any information or technical advice it has obtained in accordance with its rules of procedure. The panel may, on the joint request of the Parties, make recommendations for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3. Each Party may submit written comments to the panel on its initial report within 14 days of the presentation of the report. After considering any written comments by the Parties on the initial report, the panel may modify its report and make any further examination it considers appropriate.

4. The panel shall present a final report to the Parties within 45 days of presentation of the initial report,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The Parties shall make the final report available to the public within 15 days thereafter,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5. Paragraphs 1, 3 and 4 shall not apply to a panel reconvened under Article 20.13.4, 20.14.5, 20.14.6 or 20.15.1.

ARTICLE 20.12: SUSPENSION AND TERMINATION OF PROCEEDINGS

1. The Parties may agree that the panel suspend its work at any time for a period not exceeding 12 months from the date of such agreement. Within this period, the suspended panel shall be resumed upon the request of either Party. If the work of the panel has been continuously suspended for more than 12 months, the authority for establishment of the panel shall lapse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2. The Parties may agree to terminate the proceedings of a panel in the event that a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 to the dispute has been found.

3. Before the panel presents its final report, it may at any stage of the proceedings propose to the Parties that the dispute be settled amicably.

ARTICLE 20.13: IMPLEMENTATION OF THE FINAL REPORT

1. Where the final report of a panel contains:

(a) a determination that the measure at issue is inconsistent with the obligations of this Agreement, or that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has otherwise failed to carry out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has an obligation to bring the measure into conformity with this Agreement; or

(b) a determination of non-violation nullification or impairment in the sense of Article 20.2(c),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has an obligation to eliminate the nullification or impairment or reach a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 with the complaining Party.

2. Within 20 days of the issuance of the final report of the panel,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shall notify the complaining Party:

(a) of its intentions with respect to implementation, including an indication of possible actions it may take to comply with paragraph 1;

(b) whether such implementation can take place immediately; and

(c) if such implementation cannot take place immediately,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would need to implement.

3. If a reasonable period of time is required, it shall, whenever possible, be mutually determined by the Parties. Where the Parties are unable to agree on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within 30 days of the issuance of the final report, either Party may request the panel to determine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such requests shall be made within 120 days of the issuance of the final report.

4. Where a request is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the panel shall present to the Parties a report containing a determination of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and the reasons for such determination within 45 days of the date of the request. Prior to making this determination, the panel shall seek written submissions from the Parties, and if requested by either Party, hold a meeting with the Parties where each Party wi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present its submission. As a guideline,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determined by the panel should not exceed 15 months from the date of the issuance of the panel's final report. However, such reasonable period of time may be shorter or longer, depending upon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the principles applied in arbitrations under Article 21.3(c) of the DSU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ARTICLE 20.14: NON-IMPLEMENTATION

1.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shall enter into negotiations with the complaining Party with a view to developing mutually acceptable compensation where:

(a)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referred to in Article 20.13 has elapsed; or

(b)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has notified the complaining Party that it does not intend to comply with the obligation in Article 20.13.1.

2. If the Parties:

(a) are unable to agree on compensation within 30 days of the date the period for developing such compensation has begun; or

(b) have agreed on compensation and the complaining Party considers that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has failed to observe the terms of the agreement,

the complaining Party may at any time thereafter provide written notification to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that it intends to suspend the application to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of benefits of equivalent effect to the level of non-conformity, or nullification or impairment that the panel has found. The notification shall specify the level of benefits that the complaining Party proposes to suspend. The complaining Party may begin suspending benefits 30 days after the later of the date it provides notification to the other Party under this paragraph or the panel issues its determination under paragraph 5, as the case may be.

3. A right to suspend benefits which arises under paragraph 2 shall not be exercised while a compliance review proceeding is being undertaken under Article 20.15.

4. In considering what benefits to suspen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a) a complaining Party should first seek to suspend benefits in the same sector or sectors as that affected by the measure that the panel has found to be inconsistent with the obligations of this Agreement or in the same sector or sectors where nullification or impairment in the sense of Article 20.2(c) has been found to exist; and

(b) a complaining Party that considers it is not practicable or effective to suspend benefits in the same sector or sectors may suspend benefits in other sectors.

5. If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considers that:

(a) the level of benefits that the complaining Party has proposed to be suspended is not equivalent to the level of non-conformity, or nullification or impairment that the panel has found; or

(b) it has eliminated the non-conformity, or the nullification or impairment that the panel has found,

it may, within 30 days of the date the complaining Party provides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2, request that the panel be reconvened to consider the matter.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shall deliver its request in writing to the complaining Party. The panel shall reconvene as soon as possible after delivery of the request and shall present its determination to the Parties within 90 days of the date it reconvenes to review a request under either subparagraph (a) or (b), or within 120 days of a request under both subparagraphs (a) and (b). If the panel determines that the level of benefits proposed to be suspended is not equivalent to the level of non-conformity, or nullification or impairment that the panel has found, it shall determine the level of benefits it considers to be equivalent to the level of non-conformity, or nullification or impairment.

6. Where the right to suspend benefits has been exercised under this Article, if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considers that the level of benefits suspended by the complaining Party is not equivalent to the level of non-conformity, or the nullification or impairment that the panel has found, it may request that the panel be reconvened to consider the matter. Where the panel reconvenes in accordance with this paragraph, the timeframes in paragraph 5 shall apply. If the panel determines that the level of benefits suspended by the complaining Party is not equivalent to the level of non-conformity, or nullification or impairment that the panel has found, it shall determine the level of benefits it considers to be equivalent to the level of non-conformity, or nullification or impairment.

7. The complaining Party may suspend benefits up to the level the panel has determined under paragraph 5 or 6 or, if the panel has not determined the level, the level the Party has proposed to suspend under paragraph 2, unless the panel has determined that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has eliminated the non-conformity, or the nullification or impairment.

ARTICLE 20.15: COMPLIANCE REVIEW

1. Without prejudice to the procedures set out in Article 20.14.5, if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considers that it has eliminated the non-conformity, or the nullification or impairment that the panel has found, it may refer the matter to the panel by providing written notification to the complaining Party. The panel shall reconvene as soon as possible after delivery of the request and shall issue its report on the matter within 90 days of the date of delivery of the written notification.

2. If the panel decides that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has eliminated the non-conformity, or the nullification or impairment, the complaining Party shall promptly reinstate any benefits it has suspended under Article 20.14.

3. A panel reconvened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or in relation to Article 20.14.5(b) shall make an objective assessment of the matter before it, including an objective assessment of:

(a) the facts of any measure taken by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to comply with the obligation in Article 20.13.1; and

(b) whether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has complied with the obligation in Article 20.13.1.

4. A panel reconvened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or in relation to Article 20.14.5(b) shall set out in its report its findings on:

(a) the facts of the case; and

(b) whether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has complied with the obligation in Article 20.13.1.

ARTICLE 20.16: PRIVATE RIGHTS

Neither Party shall provide for a right of action under its law against the other Party on the ground that a measure of the other Party is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ARTICLE 20.17: EXPENSES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the expenses of a panel, including the remuneration of the panellists, shall be borne by the Parties in equal share.

ARTICLE 20.18: TIME PERIODS

Unless otherwise specified, any time periods provided for in this Chapter may be modified by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ANNEX 20-A
CODE OF CONDUCT

Responsibilities to the Process

1. Every panellist shall avoid impropriety and the appearance of impropriety, shall be independent and impartial, shall avoid direct and indirect conflicts of interests and shall observe high standards of conduct so that the integrity and impartiality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cess are preserved. Former panellists shall comply with the obligations established in paragraphs 16 through 19.

Disclosure Obligations

2. Prior to confirmation of his or her selection as a panellist under this Agreement, a candidate shall disclose any interest, relationship or matter that is likely to affect his or her independence or impartiality or that might reasonably create an appearance of impropriety or bias in the proceeding. To this end, a candidate shall make all reasonable efforts to become aware of any such interests, relationships and matters.

3. Once selected, a panellist shall continue to make all reasonable efforts to become aware of any interests, relationships and matters referred to in paragraph 2 and shall disclose them by communicating them in writing to the Joint Committee for consideration by the Parties. The obligation to disclose is a continuing duty, which requires a panellist to disclose any such interests, relationships and matters that may arise during any stage of the proceeding.

Performance of Duties by Panellists

4. A panellist shall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nd the applicable rules of procedure.

5. On selection, a panellist shall perform his or her duties thoroughly and expeditiously throughout the course of the proceeding with fairness and diligence.

6. A panellist shall not deny other panellists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all aspects of the proceeding.

7. A panellist shall consider only those issues raised in the proceeding and necessary to rendering a decision and shall not delegate the duty to decide to any other person.

8. A panellist shall take all appropriate steps to ensure that the panellist's assistant and staff are aware of, and comply with paragraphs 1, 2, 3, 18, 19 and 20.

9. A panellist shall not engage in *ex parte* contacts concerning the proceeding.

10. A panellist shall not communicate matters concerning actual or potential violations of this Annex unless the communication is to both Parties or is necessary to ascertain whether that panellist has violated or may violate this Annex.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Panellists

11. A panellist shall be independent and impartial. A panellist shall act in a fair manner and shall avoid creating an appearance of impropriety or bias.

12. A panellist shall not be influenced by self-interest, outside pressure, political considerations, public clamour, loyalty to a Party or fear of criticism.

13. A panellist shall not, directly or indirectly, incur any obligation or accept any benefit that would in any way interfere, or appear to interfere, with the proper performance of the panellist's duties.

14. A panellist shall not use his or her position on the panel to advance any personal or private interests. A panellist shall avoid actions that may create the impression that others are in a special position to influence the panellist. A panellist shall make every effort to prevent or discourage others from representing themselves as being in such a position.

15. A panellist shall not allow past or existing financial, business, professional, family or social relationships or responsibilities to influence the panellist's conduct or judgment.

16. A panellist shall avoid entering into any relationship, or acquiring any financial interest, that is likely to affect the panellist's impartiality or that might reasonably create an appearance of impropriety or bias.

Duties in Certain Situations

17. A panellist or former panellist shall avoid actions that may create the appearance that the panellist was biased in carrying out the panellist's duties or would benefit from the decision or ruling of the panel.

Maintenance of Confidentiality

18. A panellist or former panellist shall not at any time disclose or use any non-public information concerning the proceeding or acquired during the proceeding except for the purposes of the proceeding and shall not, in any case, disclose or use any such information to gain personal advantage or advantage for others or to affect adversely the interest of others.

19. A panellist shall not disclose a panel ruling or parts thereof prior to its publication.

20. A panellist or former panellist shall not at any time disclose the deliberations of a panel, or any panellist's view except as required by law.

Definitions

21. For the purposes of this Annex:

assistant means a person who, under the terms of appointment of a panellist, conducts research or provides support for the panellist;

panellist means a member of a panel established under Article 20.8;

proceeding, unless otherwise specified, means a panel proceeding under this Chapter; and

staff, in respect of a panellist, means persons under the direction and control of the panellist, other than assistants.

ANNEX 20-B
MODEL RULES OF PROCEDURE

1. Any reference made in these Rules to an Article is a reference to the appropriate Article in this Chapter.

Timetable

2. After consulting the Parties, a panel shall, as soon as practicable and whenever possible within 10 day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panel, fix the timetable for the panel process. The indicative timetable attached to these Rules should be used as a guide. The panel process, from the date of establishment until the date of the final report shall, as a general rule, not exceed 270 days,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3. In determining the timetable for the panel process, the panel shall provide sufficient time for the Parties to prepare their respective submissions. The panel shall set precise deadlines for written submissions by the Parties.

4. Any time period applicable to the panel proceeding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that begins on the date on which any panellist resigns or becomes unable to act and ends on the date on which the successor panellist is appointed.

Operation of Panels

5. The chair of the panel shall preside at all of its meetings. A panel may delegate to the chair authority to make administrative and procedural decisions.

6.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ese Rules, the panel may conduct its business by any means, including by telephone, facsimile transmission and any other means of electronic communication.

7. Only panellists may take part in the deliberations of the panel. The panel may, in consultation with the Parties, retain such number of assistants, interpreters or translators, or designated note takers as may be required for the proceeding and permit them to be present during its deliberations. Any such arrangements established by the panel may be modified by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8. The panel's deliberations shall be confidential. The panellists and the persons retained by the panel shall maintain the confidentiality of panel proceedings and deliberations.

9. Where a procedural question arises that is not addressed by these Rules, a panel may, after consulting the Parties, adopt an appropriate procedure that i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10. There shall be no *ex parte* communications with the panel concerning matters under consideration by it.

Written Submissions and Other Documents

11. Each Party shall transmit to the panel and the other Party a first submission in writing setting out the facts of its case and its arguments.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a complaining Party shall deliver its first submission to each panellist and to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within 14 days after the dat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anel.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shall deliver its first submission to each panellist and to the complaining Party within 21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first submission of the complaining Party. Each Party shall

have an opportunity to submit written rebuttal submissions after both Parties have submitted first submissions.

12. A Party shall submit all factual evidence to the panel in its first written submission, except with respect to evidence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rebuttals or answers to questions. Exceptions to this rule may be granted on a showing of good cause.

13. In respect of a request, notice or other documents related to the panel proceedings that are not covered by Rule 10 or 11, each Party shall deliver one copy of the documents to the other Party by facsimile, email or other means of electronic transmission.

14. A Party may at any time correct minor errors of a clerical nature in any request, notice, written submission or other document related to the panel proceeding by delivering a new document clearly indicating the changes.

Hearings

15. The timetabl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Rule 2 shall provide for at least one hearing for the Parties to present their case to the panel.

16. In hearings with the panel, each Party shall have an opportunity to present the facts of its case and its arguments. The complaining Party shall present its position first. The Parties shall be given an opportunity for final statements, with the complaining Party presenting its statement first.

17. The Parties shall make available to the panel written versions of their oral statements and responses to questions made in hearings with the panel.

18. The hearing shall be conducted by the panel in a manner ensuring that the complaining Party and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are afforded equal time to present their case.

19. A panel shall hold its hearing in closed session,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Availability of Information

20. Subject to Rules 21 and 22, each Party's written submissions, written versions of its oral statements, and written responses to questions from the panel may b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by either Party.

21. A Party may designate, for confidential treatment, specific information it includes in its submissions, to the extent it considers strictly necessary to protect privacy or legitimate commercial interests of particular enterprises, public or private, or to address essential confidentiality concerns.

22. Each Party shall treat as confidential information submitted by the other Party which that Party has designated as confidential. Where a Party designates information as confidential, that Party shall, on request of the other Party, provide the panel and other Party with a non-confidential summary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its written submissions that could be disclosed to the public.

23. The initial report presented to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0.11.1 and any comments on it shall be confidential.

24. Each Party shall take such reasonable steps as are necessary to ensure that its individuals involved in panel proceedings, including its experts, interpreters, translators, and court reporters (designated note takers) maintain the confidentiality of the panel proceedings.

Information Gathering

25. The Parties shall respond promptly and fully to any request by the panel for such information as the panel considers necessary and appropriate.

26. On request of a Party, or on its own initiative, the panel may seek information and technical advice, or grant a request to provide views, from any person or body that it deems appropriate, provided that the Parties so agree and subject to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Parties may agree. The panel shall provide each Party with any views, information or technical advice it receives and an opportunity to provide comments.

Reports

27. The panel shall provide to the Parties an initial report, meeting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Article 20.11.1.

28. The initial report and final report of the panel shall be drafted without the presence of the Parties. Opinions expressed in the reports of the panel by its individual panellists shall be anonymous.

Venue

29. The venue for the panel hearings shall be decided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f there is no agreement, the venue shall alternate between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with the first hearing to be hel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complained against.

Remuneration and Payment of Expenses

30. The panel shall keep a record and render a final account of all general expenses incurred in connection with the proceedings, including those paid to its assistants, designated note takers or other individuals that it retains in accordance with Rule 7.

Attachment to Annex 20-B
Model Rules of Procedure for Dispute Settlement Panel Proceedings

Indicative Timetable for a Dispute Settlement Panel[90]

Panel established on xx/xx/xxxx

(a)	Receipt of first written submissions of the Parties	
	(i) Complaining Party:	14 days
	(ii) Party complained against:	21 days
(b)	Receipt of written rebuttal submissions of the Parties:	10-25 days
(c)	Date of first hearing with the Parties:	20-45 days
(d)	Issuance of initial report to the Parties:	60-90 days
(e)	Deadline for the Parties to provide comments on the initial report:	14 days
(f)	Issuance of final report to the Parties:	31 days
Total time:		170-240 days

[90] Provision may be made for additional hearings and further submissions.

CHAPTER 21
INSTITUTIONAL PROVISIONS

ARTICLE 21.1: CONTACT POINTS

1. Each Party shall designate a contact point or points to facilitate communications between the Parties. The contact point or points thus designated shall cover any matter arising under this Agreement, except those for which specific contact points or coordinators are designated under other Chapters.

2. On request of the other Party, a Party's contact point shall identify the office or official responsible for the matter and assist, as necessary, in facilitating communications with the other Party.

ARTICLE 21.2: COOPERATION

On request of a Party, the Parties shall consult on any matter arising under this Agreement or that may affect the operation of this Agreement, includ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21.3: JOINT COMMITTEE

1. The Parties hereby establish a Joint Committee comprising officials of each Party, which shall be co-chaired by the Minister for Trade of Korea and the Minister for Trade of Australia, or their respective designees.

2. The Joint Committee shall:

(a) supervise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b) supervise the work of committees, working groups, and other bodies that are under its auspic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and 4 of Annex 21-A; and any other bodies established under this Agreement;

(c) explore ways to enhance further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d) seek to resolve disputes regarding any matter arising under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0.7; and

(e) consider any other matter that may affect the operation of this Agreement.

3. The Joint Committee may:

(a) establish and delegate responsibilities to *ad hoc* and standing committees, working groups, or other bodies;

(b) consider and decide any amendment or other modification to this Agreement subject to ratification by each Party;

(c) as appropriate, issue interpretations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d)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and

(e) take such other action in the exercise of its functions as the Parties may agree.

4.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the Joint Committee shall convene within one year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then annually for three years and thereafter as mutually determined.

ARTICLE 21.4: 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1. The 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listed in paragraphs 1 and 3 of Annex 21-A are hereby esta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the Joint Committee.

2. The composition, functions and frequency of meetings of the committees or working groups established are stipulated in the relevant Chapters of this Agreement. The 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shall be co-chaired by relevant officials of the Parties. Meetings of the 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shall be held at such venues and dates as mutually agreed by the Parties and may be conducted in person, or by any other means as mutually determined by the Parties.

3. The Joint Committee may decide to establish other committees or working groups or other bodies in order to assist it in the performance of its tasks.

4. The 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under the auspices of the Joint Committee shall inform the Joint Committee of their schedule and agenda sufficiently in advance of their meetings. They shall report to the Joint Committee on their activities at each regular meeting of the Joint Committee. The creation or existence of a committee, working group or other bodies shall not prevent either Party from bringing any matter directly to the Joint Committee.

5. The Joint Committee may decide to change or undertake the task assigned to a committee, working group or other body, or to dissolve any committee, working group or other body.

6. The Parties may establish *ad hoc* committees, working groups or other bodies. The composition, functions and frequency of meetings of any *ad hoc* committees, working groups or other bodi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Parties.

ARTICLE 21.5: DECISION-MAKING

All decisions of the Joint Committee and all committees, working groups and other bodies establish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made by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ANNEX 21-A
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1. The Committees established are:

(a) the Committee on Trade in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1 (Committee on Trade in Goods);

(b) the 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 in accordance with Annex 3-B;

(c) the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and Trade Facilit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2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and Trade Facilitation);

(d) the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8.16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e) the Committee on Telecommunic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9.25 (Committee on Telecommunications);

(f) the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12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g) the Committee on Agricultural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11 (Committee on Agricultural Cooperation); and

(h) the Committee on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19 (Committee on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Cooperation).

2. The *ad hoc* committees, which may be requested to be established by a Party, are:

(a) the *ad hoc* Committee on Labour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3.2; and

(b) the *ad hoc* Committee on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6.2.

3. The Working Group established is:

(a) the Working Group on Professional Servic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Annex 7-A (Professional Services).

4. The *ad hoc* Working Groups, which may be established on request of a Party, are:

(a)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5.9.4; and

(b) the *ad hoc* Committee on Audiovisual Co-produc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 (Institutional Mechanism) of Annex 7-B.

CHAPTER 22
GENERAL PROVISIONS AND EXCEPTIONS

ARTICLE 22.1: GENERAL EXCEPTIONS

1. For the purposes of Chapters 2 (Trade in Goods), 3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4 (Customs Administration and Trade Facilitation), 5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nd 16 (Cooperation), Article XX of GATT 1994, including its interpretive notes, is incorporated into and made part of this Agreement, *mutatis mutandis*. The Parties understand that the measures referred to in Article XX(b) of GATT 1994 include environmental measures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and that Article XX(g) of GATT 1994 applies to measures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living and non-living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2. For the purposes of Chapters 7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9 (Telecommunications), 10 (Movement of Natural Persons) and 15 (Electronic Commerce)[91], Article XIV of GATS, including its footnotes, is incorporated into and made part of this Agreement, *mutatis mutandis*. The Parties understand that the measures referred to in Article XIV(b) of GATS include environmental measures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3. For the purposes of Chapter 11 (Investment),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investments or between investors,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or investment,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enforcing measures:

(a)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b) necessary to ensure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that are not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c) imposed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treasures of artistic, historic or archaeological value; or

(d)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living or non-living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if such measures are made effective in conjunction with restrictions on domestic production or consumption.

The Parties understand that the measures referred to subparagraph (a) include environmental measures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and that the measur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d) include environmental measures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living and non-living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4.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prevent a Party from taking actions authorised by the Dispute Settlement Body of the WTO.

[91] This Article is without prejudice to whether electronic transmissions should be characterised as goods or services.

ARTICLE 22.2: ESSENTIAL SECURITY[92]

1.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a) to require a Party to furnish any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it considers contrary to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b) to prevent a Party from taking any action which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i) relating to fissionable and fusionable materials or the materials from which they are derived;

(ii) relating to the traffic in arms, ammunition and implements of war and to such traffic in other goods and materials, or relating to the supply of services, as carried on directly or indirectly for the purpose of supplying or provisioning a military establishment; or

(iii) taken in time of war or other emergency in international relations; or

(c) to prevent a Party from taking any action in pursuance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United Nations Charter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2. A Party taking action under paragraphs 1(b) and (c) shall, to the extent possible, inform the Joint Committee of measures that have been taken and of their termination.

ARTICLE 22.3: TAXATION

1.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rticle,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axation measures.

2.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to taxation measures:

(a) Chapter 2 (Trade in Goods);

(b) Articles 7.2 (National Treatment) and 8.2 (National Treatment);

(c) Articles 7.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nd 8.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only where the taxation measure is an indirect tax;

(d) Articles 11.3 (National Treatment) and 11.4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only where the taxation measure is an indirect tax; and

(e) Articles 11.9.2 through 11.9.9.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nothing in the Articl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shall apply to:

(a) any most-favoured-nation obligation under this Agreement with respect to an advantage accorded by a Party in accordance with a tax convention;

(b) a non-conforming provision of any existing taxation measure;

[92] For greater certainty, if a Party invokes this Article in an arbitral proceeding initiated under Section B of Chapter 11 (Investment), the tribunal hearing the matter shall find that the exception applies.

(c) the continuation or prompt renewal of a non-conforming provision of any existing taxation measure;

(d) an amendment to a non-conforming provision of any existing taxation measure to the extent that the amendment does not decrease its conformity, at the time of the amendment, with any of those Articles;

(e) the adoption or enforcement of any taxation measure aimed at ensuring the equitable or effective imposition or collection of taxes as permitted by GATS Article XIV(d) without regard to the limitation in that Article to direct taxes; or

(f) a provision that conditions the receipt, or continued receipt of an advantage relating to the contributions to, or income of, a pension trust, superannuation fund, or other arrangement to provide pension, superannuation, or similar benefits on a requirement that the Party maintain continuous jurisdiction, regulation, or supervision over such trust, fund, or other arrangement.

4. Article 11.16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shall apply to a taxation measure alleged to be an expropriation.

5. Article 11.7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shall apply to taxation measures. However, no investor may invoke Article 11.7 as the basis for a claim where it has been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is paragraph that the measure is not an expropriation. An investor that seeks to invoke Article 11.7 with respect to a taxation measure must first refer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at the time that it gives its notice of intent under Article 11.16.2, the issue of whether that taxation measure is not an expropriation. If the competent authorities do not agree to consider the issue or, having agreed to consider it, fail to agree that the measure is not an expropriation within a period of 180 days of such referral, the investor may submit its claim to arbitration under Article 11.16.3.

6.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either Party under any tax convention. In the event of any inconsistency relating to a taxation measure between this Agreement and any tax convention, the latter shall prevail to the extent of the inconsistency.

7. If either Party considers there is any inconsistency relating to a taxation measure between this Agreement and any tax convention,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immediately consult.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include:

(a) for Korea,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b) for Australia, the Treasury.

8.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taxation measures shall not include any customs or import duties.

ARTICLE 22.4: DISCLOSURE OF INFORMATION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require a Party to furnish or allow access to confidential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impede law enforcement or otherwise be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or which would prejudice the legitimate commercial interests of particular enterprises, public or private.

ARTICLE 22.5: CONFIDENTIALITY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where a Party provides information to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and designates the information as confidential, the Party receiving the information shall maintain the confidentiality of the information. The information shall be used only for the purposes specified by the Party providing the information. It shall not be disclosed without the specific written permission of the Party providing the information, except where the release or disclosure of information is necessary to comply with the legal requirements of a Party, in which case the Party that has received the information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before such release or disclosure is made.

CHAPTER 23
FINAL PROVISIONS

ARTICLE 23.1: ANNEXES, APPENDICES AND FOOTNOTES

The Annexes, Appendices and footnotes to this Agreement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RTICLE 23.2: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30 days after the date the Parties exchange written notifications certifying that they have completed their respective applicable legal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r on such other date as the Parties may agree.

ARTICLE 23.3: AMENDMENTS

1. The Parties may agree, in writing, to amend this Agreement. An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after the Parties exchange written notifications certifying that they have completed their respective applicable legal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r on such date as the Parties may agree.

2.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if any provision of the WTO Agreement that is incorporated into or 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is amended, the Parties shall consult on whether to amend this Agreement.

ARTICLE 23.4: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180 days after the date either Party notifies the other Party in writing that it wishes to terminate the Agreement.

2. Within 30 days of the delivery of a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 either Party may make a written request to the other Party to enter into consultations regarding whether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should terminate on a date later than that provided under paragraph 1. The consultations shall begin no later than 30 days after the Party delivers its request.

3.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Annex 7-B.

ARTICLE 23.5: AUTHENTIC TEXT

The Korean and English texts of this Agreement are equally authentic.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at Seoul, this 8th day of April, 2014, in duplicate,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AUSTRALIA:

ANNEX I
Explanatory Notes

1. The Schedule of a Party to this Annex sets out, pursuant to Articles 7.6 (Non-Conforming Measures –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11.12 (Non-Conforming Measures – Investment), a Party's existing measures that are not subject to some or all of the obligations imposed by:

   (a) Article 7.2 (National Treatment –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or 11.3 (National Treatment – Investment);

   (b) Article 7.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or 11.4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 Investment);

   (c) Article 7.4 (Market Access –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d) Article 7.5 (Local Presence –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e) Article 11.9 (Performance Requirements – Investment); or

   (f) Article 11.10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 Investment).

2. Each Schedule entry sets out the following elements:

   (a) **Sector** refers to the sector for which the entry is made;

   (b) **Obligations Concerned** specifies the oblig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at, pursuant to Articles 7.6.1(a) (Non-Conforming Measures –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11.12.1(a) (Non-Conforming Measures – Investment), do not apply to the listed measure(s);

   (c) **Level of Government** indicates the level of government maintaining the listed measure(s);

   (d) For Korea, **Measures** identifies the laws,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for which the entry is made. For Australia, **Source of Measure** means the laws,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that are the source of the non-conforming measure for which the entry is made. A measure cited in the **Measures** or **Source of Measure** element:

      (i) means the measure as amended, continued or renewed a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ii) includes any subordinate measure adopted or maintained under the authority of and consistent with the measure;

   (e) **Description**, for Australia, sets out the non-conforming measure for which the entry is made; and **Description**, for Korea, provides commitments, if any, for liberalisation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and the remaining non-conforming aspects of the **Measures** for which the entry is made.

3. In accordance with Article 7.6.1(a) (Non-Conforming Measures –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11.12.1(a) (Non-Conforming Measures – Investment), the articles of this Agreement specified in the **Obligations Concerned** element of an entry do not apply, in the case of Australia, to the non-conforming measure identified in the **Description** element of that entry or, in the case of Korea, to the law, regulation or other measure identified in the **Measures** element of that entry.

4. Local Presence and National Treatment are separate disciplines and a measure that is only inconsistent with Local Presence (such as residency requirements) need not be reserved against National Treatment.

5. Where a Party maintains a measure that requires that a service supplier be a citizen, permanent resident or resident of its territory as a condition to the supply of a service in its territory, a Schedule entry for that measure taken with respect to Article 7.2 (National Treatment –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7.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or 7.5 (Local Presence –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shall operate as a Schedule entry with respect to Article 11.3 (National Treatment – Investment), 11.4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 Investment) or 11.9 (Performance Requirements – Investment) to the extent of that measure.

6. For Korea, a "foreign person" means a foreign national or an enterprise organised under the laws of another country.

ANNEX I
SCHEDULE OF KOREA

Sector: Construction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Local Presence (Article 7.5)

Measures: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Law No. 12012, August 6, 2013), Articles 9 and 10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Presidential Decree No. 24616, June 17, 2013), Article 13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10, June 17, 2013), Articles 2 and 3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struction Business Act (Law No. 11690, March 23, 2013), Article 14

Fire Fighting System Installation Business Act (Law No. 11782, May 22, 2013), Articles 4 and 5

Enforcement Decree of the Fire Fighting System Installation Business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417, March 23, 2013), Article 2 (Table 1)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Fire Fighting System Installation Business Act (Ordinance of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No. 3, March 23, 2013), Article 2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 person that supplies construction services in Korea must, prior to the signing of the first contract related to such services,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Sector: Leasing, Rental, Maintenance, Repair, Sales, and Disposal Services Related to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

Obligations Concerned: Local Presence (Article 7.5)

Measures: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Law No. 11919, July 16, 2013), Article 21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443, March 23, 2013), Articles 13, 14, 15 and 15-2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1, March 23, 2013), Articles 57 through 63, 65-2 and 65-3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 person that supplies leasing, rental, maintenance, repair, sales, and disposal services related to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Sector:	Transportation Services – Automobile Maintenance, Repair, Sales, Disposal, and Inspection Services; Automobile License Plate Issuing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Market Access (Article 7.4) Local Presence (Article 7.5)
Measures:	*Automobile Management Act* (Law No. 11929, July 16, 2013), Articles 20, 44, 45 and 53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24, September 6, 2013), Articles 7, 8, 83, 87 and 111 *Rule on Enforcement of Comprehensive Inspection of Automobiles, Etc.*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1, March 23, 2013), Article 16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 person that supplies automobile management services (which includes used car sales, maintenance, auto dismantling and recycling services)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and register its business with the head of the *si/gun/gu* (municipal authorities), which is subject to an economic needs test, as appropriate. A person that supplies automobile inspection services that is designated as a "designated inspection facility"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A person that supplies license plate manufacturing, delivery, and seal services that is designated as a "license plate issuing agency"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Sector:	Distribution Services – Wholesale and Retail Distribution of Tobacco and Liquor
Obligations Concerned:	Market Access (Article 7.4) Local Presence (Article 7.5)
Measures:	*Tobacco Business Act* (Law No. 11690, March 23, 2013), Articles 12, 13 and 16 *Enforcement Decree of the Tobacco Business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519, April 26, 2013), Articles 4 and 5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Tobacco Business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No. 131, March 3, 2010), Articles 5, 7 and 7-3 *Liquors Act* (Law No. 11873, June 7, 2013), Articles 8 through 10 and 43 *Enforcement Decree of the Liquors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638, June 28, 2013), Article 9 and 56 *Notice on Sales of Liquor by Telecommunication Means* (Notice of National Tax Service No. 2012-68, October 1, 2012) and *Notice on Designation of Zone for Liquor License* (Notice of National Tax Service No. 2013-15, April 1, 2013)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 person that supplies tobacco wholesale (including importation) or retail distribution services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Only designated tobacco retailers may sell tobacco to retail buyers. The sale of tobacco to retail buyers by mail or in electronic commerce is prohibited. The distance between places of business of tobacco retailers must be at least 50 meters. A person that supplies liquor wholesale distribution services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and obtain authorisation from the head of the relevant tax office, which is subject to an economic needs test. The sale of liquor by telephone or in electronic commerce is prohibited.

Sector:	Agriculture and Livestock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11.3)
Measures: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Law No. 11535, December 11, 2012), Article 4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638, June 28, 2013), Article 5 *Regulations on Foreign Investment and Introduction of Technology* (Notic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No. 2013-37, May 30, 2013), Attached table 2
Description:	Investment Foreign persons may not: (a) invest in an enterprise engaged in rice or barley farming; or (b) hold 50 percent or more of the equity interest of an enterprise engaged in beef cattle farming.

Sector:	Business Services – *An-gyung-sa* (Optician and Optometry)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Market Access (Article 7.4) Local Presence (Article 7.5)
Measures:	*Medical Technicians Act* (Law No. 11860, June 4, 2013), Article 12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Medical Technicians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o. 193, April 17, 2013), Article 1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Only a natural person that is a licensed *an-gyung-sa* (optician or optometrist) that has established an office in Korea may engage in optician or optometry services. An *an-gyung-sa* (optician or optometrist) may not establish more than one office.

Sector: Wholesale and Retail Distribution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Market Access (Article 7.4)
Local Presence (Article 7.5)

Measures:

Pharmaceutical Affairs Act (Law No. 12074, August 13, 2013), Articles 42 and 45

Enforcement Decree on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s (Presidential Decree No. 24479, March 23, 2013), Article 31-2

Enforcement Decree on the Standards of Facilities of Manufacturer and Importers of Medicinal Products, Etc. (Presidential Decree No. 24479, March 23, 2013), Article 6

Supply and Demand of Oriental Medicinal Herbs Regulations (Noti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o. 2013-63, April 18, 2013), Articles 4 and 12

Medical Devices Act (Law No. 12107, August 13, 2013), Article 15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Medical Devices Act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No. 1016, March 23, 2013), Article 20

Health Functional Foods Act (Law No. 11508, October 22, 2012), Article 6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No. 1010, March 23, 2013), Articles 2 and 5

Food Sanitation Act (Law No. 11819, May 22, 2013), Articles 24, 36 and 37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800, October 16, 2013), Articles 23 and 24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Food Sanitation Act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No. 1041, October 25, 2013), Articles 23 and 36 (attached table 14)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Law No. 11984, July 30, 2013), Articles 6 and 6-2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 person that supplies wholesale trade services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in order to receive an import business license to supply such services with respect to:

(a) pharmaceuticals and related items;

(b) medical devices; or

(c) health functional foods (including dietary supplements).

To supply the following services a person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a) transportation, sales, and preservation (cold storage) of food and food additives;

(b) food supply services;

(c) food inspection services; or

(d) narcotic drug wholesale and retail distribution services.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controls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wholesale distribution of imported designated *han-yak-jae* (Asian medicinal herbs).

Certain liquor-selling bars and the wholesale and retail distribution of narcotics require authorisation by the relevant authority.

Sector:	Retail Distribution Services of Pharmaceuticals
Obligations Concerned:	Market Access (Article 7.4) Local Presence (Article 7.5)
Measures:	*Pharmaceutical Affairs Act* (Law No. 12074, August 13, 2013), Articles 20 and 21 *Enforcement Decree on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479, March 23, 2013), Article 22-2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 person that supplies pharmaceutical product retail distribution services (including distribution of *han-yak-jae* (Asian medicinal herbs)) must establish a pharmacy in Korea. That person may not establish more than one pharmacy nor establish a pharmacy in the form of a corporation.

Sector:	Transportation Services – Rail Transportation and Incidental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7.2) Market Access (Article 7.4)
Measures:	*Railroad Enterprise Act* (Law No. 11690, March 23, 2013), Articles 5, 6 and 12 *Korea Railroad Corporation Act* (Law No. 12025, August 6, 2013), Article 9 *Rail Construction Act* (Law No. 12023, August 6, 2013), Article 8 *Framework Act on Rail Industry Development* (Law No. 11690, March 23, 2013), Articles 3, 20, 21, 26 and 38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ct* (Law No. 11690, March 23, 2013), Article 7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The existing regulation broadly states that only juridical persons that have obtained authorisation from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supply railroad transportation services. In practice, however, only juridical persons of Korean nationality (of which shares are 100 per cent owned by the shareholders with Korean nationality) established by a Korean national may supply railroad transportation services on railroad routes constructed on or before June 30, 2005. Only juridical persons that have obtained authorisation from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supply railroad transportation services on railroad routes constructed on or after July 1, 2005. Such authorisation is subject to an economic needs test. Only the central or local level of government or the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may supply rail construction services and maintain and repair government-owned rail facilities (including high-speed rail). However, juridical persons that meet the criteria in the *Private Investment in Social Infrastructure Act* may supply rail construction services.

Sector:	Transportation Services – Passenger Road Transportation Services (excluding Taxis and Scheduled Passenger Road Transportation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Local Presence (Article 7.5)
Measures: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Law No. 12020, August 6, 2013), Articles 4 and 5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443, March 23, 2013), Article 3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35, November 7, 2013), Article 11 *Tramway Transportation Act* (Law No. 11647, March 22, 2013), Article 4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Tramway Transportation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1, March 23, 2013), Article 3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 person that supplies passenger road transportation services, excluding taxis and scheduled passenger road transportation services, must establish an office in the *dang-hae-ji-yeok* (relevant geographic area) in Korea.

Sector:	Transportation Services – International Maritime Cargo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uxiliary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7.2) Market Access (Article 7.4) Local Presence (Article 7.5)
Measures:	*Maritime Transportation Act* (Law No. 12092, August 13, 2013), Articles 24 and 33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Maritime Transportation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No. 1, March 24, 2013), Articles 16, 19, 22 and 23 *Pilotage Act* (Law No. 11690, March 23, 2013), Article 6 *Ship Investment Company Act* (Law No. 11756, April 5, 2013), Articles 3 and 31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 person that engages in international maritime cargo transportation services must be organised as a *Chusik Hoesa* (stock company) in Korea and registered according to the *Maritime Transportation Act*. A ship investment company must also be organised as a *Chusik Hoesa* (stock company) in Korea and registered according to the *Ship Investment Company Act*. A person that engages in shipping brokerage services, maritime agency services and vessel maintenance services must be the company as stipulated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and registered according to the *Maritime Transportation Act*. Only a Korean national may supply maritime pilotage services.

Sector:	Transportation Services – Air Transportation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11.3)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Measures:	*Aviation Act* (Law No. 12026, August 6, 2013), Articles 3, 6, 112, 113, 114, 132 and 135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viation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569, February 15, 2013), Articles 14-2, 15, 278, 278-3, 296-2, 298 and 299
Description:	Investment The following persons may not supply scheduled or non-scheduled domestic air transportation services or supply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services as Korean air carriers: (a) a foreign national; (b) a foreign government or a foreign *gong-gong-dan-che* (organisation for public purposes); (c) an enterprise organised under foreign law; (d) an enterprise in which any of the person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a) through (c) owns half or more than half of the equity interest, or has control; or (e) an enterprise organised under Korean law whose *dae-pyo-ja* (for example, a chief executive officer, president, or similar principal senior officer) is a foreign national or half or more of whose senior management are foreign nationals. A person that is authorised to operate a self-owned or chartered aircraft must register the aircraft with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persons listed in subparagraphs (a) through (e) are not allowed to register an aircraft.

Sector:	Transportation Services – Specialty Air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Local Presence (Article 7.5)
Measures:	*Aviation Act* (Law No. 12026, August 6, 2013), Articles 3, 6, and 134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viation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569, February 15, 2013), Articles 15-2, 298 and 299-2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A person that supplies aircraft-*sa-yong* (use) services or such non-scheduled air transportation services as glider towing, parachute jumping, aerial construction, heli-logging, and aerial sightseeing must register its self-owned or chartered aircraft with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The following persons may not register an aircraft: (a) a foreign national; (b) a foreign government or a foreign *gong-gong-dan-che* (organisation for public purposes); (c) an enterprise organised under foreign law; (d) an enterprise in which any of the pers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a) through (c) owns half or more than half of the equity interest, or over which any of those persons has control; or (e) an enterprise organised under Korean law whose *dae-pyo-ja* (for example, a chief executive officer, president, or similar principal senior officer)is a foreign national or half or more of whose senior management are foreign nationals. For the purposes of this entry, aircraft-*sa-yong* (use) services are services using an aircraft, and supplied upon request, for hire, other than for passenger or freight transportation, including aerial fire-fighting, forestry fire management, aerial advertising, flight training, aerial mapping, aerial investigation, aerial spraying, aerial photographing and other aerial agricultural activities, and aerial inspections and observations.

Sector:	Transportation Services – Road Transportation Support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Market Access (Article 7.4) Local Presence (Article 7.5)
Measures: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Law No. 12020, August 6, 2013), Articles 36 and 37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35, November 7, 2013), Article 73 *Parking Lot Service Act* (Law No. 11690, March 23, 2013), Article 12 *Road Traffic Act* (Law No. 12045, August 13, 2013), Article 36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 person that supplies parking lot services, bus terminal operation services, or car towing and storage services must establish a place of business in the relevant geographic area in Korea and obtain an authorisation from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ead of local police, or head of *si/gun*, as appropriate, which is subject to an economic needs test. (However, a person that supplies parking lot services must notify a head of *si/gun/gu* of the parking lot establishment).

Sector:	Courier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Market Access (Article 7.4) Local Presence (Article 7.5)
Measures:	*Aviation Act* (Law No. 12026, August 6, 2013), Article 139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viation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569, February 15, 2013), Article 306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Law No. 11933, July 16, 2013), Articles 3, 24 and 29 *Enforcement Regulations of Truck Transportation Business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19, July 11, 2013), Articles 6, 34 and 41-2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 person that supplies international courier services, including commercial document delivery services, as specified in Article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ostal Services Act*,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In order to obtain a trucking business license from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 domestic courier services supplier must establish an office in the relevant geographic area. Such a license is subject to the permission standards and an economic needs test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For greater certainty, a person who acquired an existing domestic courier business under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does not need to obtain a new trucking business license provided that the acquirer operates under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as set out in the acquiree's license.

Secto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Market Access (Article 7.4)
Local Presence (Article 7.5)

Measures: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Law No. 12035, August 13, 2013), Articles 6, 7, 8, 21 and 87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Law No. 5385, August 28, 1997), Addenda Article 4

Radio Waves Act (Law No. 11712, March 23, 2013), Articles 13 and 20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A license for facilities-based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or a registration for non-facilities-based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shall be granted only to a juridical person organised under Korean law.

A license for facilities-based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shall not be granted to or held by a juridical person organised under Korean law in which a foreign government, foreign person, or deemed foreign person holds in the aggregate more than 49 percent of the juridical person's total voting shares.

A foreign government, foreign person, or deemed foreign person may not in the aggregate hold more than 49 percent of the total voting shares of a facilities-based supplier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 addition, with respect to KT Corporation (KT), a foreign government, foreign person, or deemed foreign person may not be the largest shareholder of KT, except if it holds less than five percent of the total voting shares of KT.

No later than two years after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Korea shall permit:

(a) a deemed foreign person to hold up to 100 percent of the total voting shares of a facilities-based supplier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organised under Korean law, other than KT and SK Telecom Co, Ltd (SK Telecom); and

(b) a facilities-based supplier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organised under Korean law in which a deemed foreign person holds up to 100 percent of its total voting shares to obtain or hold a license for facilities-based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 foreign government, or its representative, or a foreign person may not obtain or hold a radio station license.

A foreign person may not supply cross-border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to Korea, except through a commercial arrangement with a supplier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hat is licensed in Korea.

For the purposes of this entry:

(a) "deemed foreign person" means a juridical person organised under Korean law in which a foreign government or a foreign person (including a "specially related person" under relevant Korean laws or regulations) is the largest shareholder and holds 15 percent or more of that juridical person's total voting shares, but does not include a juridical person that holds less than one percent of the total voting shares of a facilities-based supplier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b) consistent with Article 5.2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Law No. 12035, August 13, 2013), a facilities-based supplier is a supplier that owns transmission facilities;

(c) consistent with Article 5.3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Law No. 12035, August 13, 2013), a non-facilities-based supplier is a supplier that does not own transmission facilities (but may own a switch, router or multiplexer) and supplies its public telecommunication services through transmission facilities of a licensed facilities-based supplier; and

(d) consistent with subparagraph 3 of Article 2 of the *Telecommunications Basic Act* (Law No. 11690, March 23, 2013), "transmission facilities" means wireline or wireless transmission facilities (including circuit facilities) that connect transmitting points with receiving points.

Sector:	Real Estate Brokerage and Appraisal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Local Presence (Article 7.5)
Measures:	*Act on Duties of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Filing of Real Estate Transactions* (Law No. 11866, June 4, 2013), Article 9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uties of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Filing of Real Estate Transactions* (Presidential Decree No. 24443, March 23, 2013), Article 13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ct on Duties of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Filing of Real Estate Transactions*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1, March 23, 2013), Article 4 *Public Notice of Values and Appraisal of Real Estate Act* (Law No. 11690, March 23, 2013), Article 27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Notice of Values and Appraisal of Real Estate Act* (Presidential Decree No. 23919, June 29, 2012), Articles 65, 66 and 68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Public Notice of Values and Appraisal of Real Estate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1, March 23, 2013), Articles 25 and 26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 person that supplies real estate brokerage services or real estate appraisal services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Sector:	Retail, Leasing, Rental and Repair Services Related to Medical Devices
Obligations Concerned:	Local Presence (Article 7.5)
Measures:	*Medical Devices Act* (Law No. 12107, August 13, 2013), Articles 16 and 17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Medical Devices Act*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No. 1016, March 23, 2013), Articles 22 and 24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 person that supplies retail, leasing, rental, or repair services related to medical devices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Sector:	Rental Services – Automobiles
Obligations Concerned:	Local Presence (Article 7.5)
Measures: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Law No. 12020, August 6, 2013), Articles 28 and 29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35, November 7, 2013), Article 60, 61, 62 and 64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 person that supplies automobile rental services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Sector:	Scientific Research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Measures:	*Marine Scientific Research Act* (Law No. 12091, August 13, 2013), Articles 6, 7, and 8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 (Law No. 10524, April 4, 2011), Article 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A foreign person, a foreign government, or a Korean enterprise owned or controlled by a foreign person that intends to conduct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the territorial waters,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of Korea must obtain prior authorisation or consent from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whereas a Korean national or a Korean enterprise not owned or controlled by a foreign person need only to provide notification to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ector:	Professional Services – Legal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Market Access (Article 7.4) Local Presence (Article 7.5)
Measures:	*Attorney-at-law Act* (Law No. 11825, May 28, 2013), Articles 4, 7, 21, 21-2, 34, 45, 58-6, 58-22 and 109 *Certified Judicial Scriveners Act* (Law No. 8920, March 21, 2008), Articles 2, 3 and 14 *Notary Public Act* (Law No. 11823, May 28, 2013), Articles 10, 16 and 17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Only a *byeon-ho-sa* (Korean-licensed lawyer) registered with the Korean Bar Association may supply legal services. Only a *byeon-ho-sa* (Korean-licensed lawyer) may establish the following types of legal entity: *beop-yool-sa-mu-so* (law office), *beop-mu-beop-in* (law company with the characteristics of partnership), *beop-mu-beop-in* (*yoo-han*) (limited liability law company), or *beop-mu-jo-ha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aw office). For greater certainty, a person that is not a Korean-licensed lawyer is not permitted to invest in any of these types of legal entity. A *byeon-ho-sa* (Korean-licensed lawyer) or *beop-mu-sa* (Korean-certified judicial scrivener) who practices in Korea must establish an office in the jurisdiction of the district court in which he or she practices. A *gong-jeung-in* (Korean notary public) must establish an office in the jurisdiction of the district office of the public prosecutor in which he or she practices. This entry is subject to the commitments undertaken in the entry for Legal Services – Foreign Legal Consultants in the Schedule of Korea to Annex II.

Sector:	Professional Services – Labor Affairs Consulting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Local Presence (Article 7.5)
Measures:	*Certified Labor Affairs Consultant Act* (Law No. 10321, May 25, 2010), Articles 5 and 7-2, 7-3 and 7-4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Labor Affairs Consultant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447, March 23, 2013), Articles 15 and 19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Certified Labor Affairs Consultant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No. 78, March 23, 2013), Articles 6 and 10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 person that supplies labor affairs consulting services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and be a *gong-in-no-mu-sa* (Korean-licensed labor affairs consultant) registered under the *Certified Labor Affairs Consultant Act*. For greater certainty, an enterprise that supplies labor affairs consulting services must consist of at least two *gong-in-no-mu-sa* (Korean-licensed labor affairs consultant) (including the natural person who is the founder) and must obtain authorisation from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ector:	Professional Services – Patent Attorney (*byeon-ri-sa*)
Obligations Concerned:	Market Access (Article 7.4) Local Presence (Article 7.5)
Measures:	*Patent Attorney Act* (Law No. 11962, July 30, 2013), Articles 3, 5, 6-2 and 6-3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Only a *byeon-ri-sa* (Korean-licensed patent attorney) who is registered with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ay supply patent attorney services. Only a *byeon-ri-sa* (Korean-licensed patent attorney) may establish a *gae-in-sa-mu-so* (sole proprietorship) or a *teuk-heo-beop-in* (patent law firm). For greater certainty, a person that is not a Korean-licensed patent attorney may not invest in either of these types of legal entity. A *byeon-ri-sa* (Korean-licensed patent attorney) may establish only one office.

Sector:	Professional Services – Accounting and Auditing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Market Access (Article 7.4) Local Presence (Article 7.5)
Measures: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Law No.10866, July 21, 2011), Articles 2, 7, 12, 18 and 23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ct* (Law No. 11845, May 28, 2013), Article 3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Only *gae-in-sa-mu-so* (sole proprietorships), *gam-sa-ban* (auditing task forces) or *hoe-gye-hoep-in* (accounting corporation limited liability companies) established in Korea by *gong-in-hoe-gye-sa* (Korean-certified public accountants) registered under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may supply accounting and auditing services. For greater certainty, a person that is not a Korean-registered certified public accountant may not invest in any of these types of legal entity. Only *gong-in-hoe-gye-sa* (Korean-certified public accountants) in an auditing task force or an accounting corporation may supply auditing services regulated under the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ct*. This entry is subject to the commitments undertaken in the entry for Professional Services – Foreign Chartered Accountants in the Schedule of Korea to Annex II.

Sector:	Professional Services –Taxation Services (*se-mu-sa*)
Obligations Concerned:	Market Access (Article 7.4) Local Presence (Article 7.5)
Measures: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Law No. 11610, January 1, 2013), Articles 6, 13, 16-3 and 20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824, November 5, 2013), Article 97 *Guidelines Governing the Work of Tax Agents* (Ord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No. 1761, August 24, 2009), Articles 20 and 22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Only *se-mu-sa-mu-so* (sole proprietorships), *se-mu-jo-jeong-ban* (tax reconciliation task forces) or *se-mu-beop-in* (tax agency corporation limited liability companies) established in Korea by *se-mu-sa* (Korean-certified tax accountants) registered under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may supply *se-mu-sa* (Korean-certified tax accountants) services, including tax reconciliation services and tax representative services. For greater certainty, a person that is not a Korean-registered certified tax accountant may not invest in any of these types of legal entity. Only *se-mu-jo-jeong-ban* (tax reconciliation task forces) or a *se-mu-beop-in* (tax agency corporation limited liability companies) may supply tax reconciliation services. This entry is subject to the commitments undertaken in the entry for Professional Services – Foreign Certified Tax Accountants in the Schedule of Korea to Annex II.

Sector:	Professional Services – Customs Clearance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Market Access (Article 7.4) Local Presence (Article 7.5)
Measures:	*Customs Broker Act* (Law No. 10570, April 8, 2011), Articles 3, 7 and 9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Only a *gwan-se-sa* (customs broker) licensed under the *Customs Brokers Act*, a corporation incorporated by such customs brokers, or a corporation licensed to engage in the customs-clearance brokerage business under the *Customs Broker Act* may supply customs-clearance services. A person that supplies customs-clearance services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Sector: Engineering and Other Technical Services – Industrial Safety, Health Institution, and Consulting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Local Presence (Article 7.5)

Measures: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Law No. 11882, June 12, 2013), Articles 15, 16 and 52-4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684, August 6, 2013), Articles 15-2, 15-3, 19-2 and 19-3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No. 86, August 6, 2013), Articles 17, 18, 20, 21 and 136-8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 person that supplies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or diagnostic services to industrial workplaces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A person that supplies industrial safety or hygiene consulting services, such as evaluation and instruction on safety in a work process and evaluation and instruction on the improvement of work environments,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Sector: Engineering and Other Technical Services – Architectural Services, Engineering Services, Integrated Engineering Services,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Local Presence (Article 7.5)

Measures: *Certified Architects Act* (Law No. 11690, March 23, 2013), Article 23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Architects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443, March 23, 2013), Articles 22 and 23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Certified Architects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1, March 23, 2013), Article 13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Law No. 12299, January 21, 2014), Article 21

Professional Engineers Act (Law No. 11690, March 23, 2013), Article 6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Law No. 11928, July 6, 2013), Article 9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Presidential Decree No. 24443, March 23, 2013), Article 11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Law No. 11690, March 23, 2013), Articles 25 and 28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390, February 20, 2013), Articles 91 and 108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4, April 1, 2013), Article 48

Act on Land Survey, Hydrographic Survey and Cadastral Records (Law No. 11943, July 17, 2013), Articles 44 and 54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Land Survey, Hydrographic Survey and Cadastral Records (Presidential Decree No. 24596, June 11, 2013), Articles 34, 35, 36, 45, 46 and 47

Environmental Testing and Inspection Act (Law No. 11690, March 23, 2013), Article 16

Thermal Spring Management Act (Law No. 11896, July 16, 2013), Article 7

Fire Fighting System Installation Business Act (Law No. 11782, May 22, 2013), Article 4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 person that supplies architectural services, engineering services, integrated engineering services,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s, or surveying services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For greater certainty, this entry does not apply to the supply of services by a foreign licensed architect through a joint contract with a Korean-licensed architect who registered in architectural profession and established an architect's office.
Sector:	Business Services – Electronic Billboard Operator Services and Outdoor Advertisement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Local Presence (Article 7.5)
Measures:	*Broadcasting Act* (Law No. 12093, August 13, 2013), Articles 13 and 73 *Outdoor Advertisements, Etc. Management Act* (Law No. 11690, March 23, 2013), Article 11 *Enforcement Decree of the Outdoor Advertisements, Etc. Management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632, June 21, 2013), Articles 14 and 44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A foreign national or a Korean national who serves as a *dae-pyo-ja* (for example, a chief executive officer, president, or similar principal senior officer) of a foreign enterprise may not serve as the *dae-pyo-ja* (for example, a chief executive officer, president, or similar principal senior officer) or chief programmer of an enterprise that supplies electronic billboard operator services. At least 20 percent of the electronic billboard programs must be non-commercial public advertisements provided by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A person that supplies outdoor advertising services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Sector:	Business Services – Job Placement Services, Labor Supply and Worker Dispatch Services, and Education Services for Seafarer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Market Access (Article 7.4) Local Presence (Article 7.5)
Measures:	*Employment Security Act* (Law No. 11048, September 15, 2011), Articles 19 and 33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Security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076, August 31, 2012), Articles 21 and 33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Employment Security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No. 72, December 27, 2012), Articles 18 and 36 *Act Relating to Protection for Dispatched Workers* (Law No. 11668, March 22, 2013), Articles 7, 8, 9 and 10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Relating to Protection for Dispatched Workers* (Presidential Decree No. 23853, June 12, 2012), Article 3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ct Relating to Protection for Dispatched Workers*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No. 64, August 2, 2012), Article 3, 4 and 5 *Special Act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Economic Zones* (Law No. 11690, March 23, 2013), Article 17 *Seafarers Act* (Law No. 11690, March 23, 2013), Articles 109, 110, 112, 115, 116, 117, 142 and 143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Act* (Law No. 11690, March 23, 2013), Article 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A person that supplies job placement services for a fee, worker supply services, or worker dispatch (secondment) services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For transparency purposes, as of 29 October 2013 the types of business to which workers may be seconded are limited to the 32 businesses set forth in the Presidential Decree, but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can expand the types of business and the secondment period, pursuant to the review and determination by the Committee of the Free Economic Zone. Only the Korea Seafarers Welfare and Employment Center and regional offices of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supply seafaring labor supply services. In order to become an agent for seafarer personnel management services, a person must register with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s a stock company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Only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may provide education and training for seafarers.

Sector:	Investigation and Security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Market Access (Article 7.4) Local Presence (Article 7.5)
Measures:	*Certified Private Security Act* (Law No. 11690, March 23, 2013), Articles 3 and 4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Private Security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419, March 23, 2013), Articles 3 and 4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Certified Private Security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No. 20, October 22, 2013), Article 3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Only a juridical person organised under Korean law may supply security services in Korea. For transparency purposes, only five types of security services are permitted in Korea: (a) *shi-seol-gyung-bee* (facility security); (b) *ho-song-gyung-bee* (escort security); (c) *shin-byun-ho-ho* (personal security); (d) *gee-gye-gyung-bee* (mechanised security); and (e) *teuk-soo-gyung-bee* (special security).

Sector:	Distribution Services Related to Publication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7.2)
Measures:	*Publication Cultural Industry Promotion Act* (Law No. 11048, September 15, 2011), Articles 18, 19 and 19-3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ation Cultural Industry Promotion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020, August 3, 2012), Article 12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Publication Cultural Industry Promotion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o. 121, July 27, 2012), Article 7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Publications for the purpose of domestic distribution are subject to a review process on an *ad hoc* basis.

Sector:	Transportation Services – Aircraft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Local Presence (Article 7.5)
Measures:	*Aviation Act* (Law No. 12026, August 6, 2013), Articles 137, 137-2, and 138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viation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569, February 15, 2013), Articles 16, 304 and 30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 person that supplies aircraft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Sector:	Education Services – Higher Education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Market Access (Article 7.4)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Measures:	*Higher Education Act* (Law No. 12036, August 13, 2013), Articles 3, 4, 32, 42 and 43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er Education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847, November 20, 2013), Article 28 *Private School Act* (Law No. 11622, January 23, 2013), Articles 3, 5, 10 and 21 *Enforcement Decree of the Private School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665, July 22, 2013), Article 9-3 *Decre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esidential Decree No. 24423, March 23, 2013), Articles 1 and 2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Half or more of the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privat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must be Korean nationals. If a foreign person or foreign juridical person contributes half or more of the basic property of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up to but not including two-thirds of the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such an institution may be foreign nationals. For the purposes of this entry, "basic property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means real estate, property designated as basic property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property incorporated into the basic property according to decis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an annual budgetary surplus reserve of the institution. Only non-profit school juridical persons approv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may establish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other than the types of institutions listed in the Schedule of Korea to Annex II) in Korea. The Minister of Education may restrict the total number of students per year in the fields of medicine, pharmacology, veterinary medicine, traditional Asian medicine, medical technicians, and higher education for pre-primary, primary, and secondary teachers,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loc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or the purposes of this entry, "Seoul Metropolitan Area" includes the Seoul Metropolitan City,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Gyeonggi Province. Only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of Korea may establish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for training of primary school teachers. Only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may establish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at supply higher education services to the public through broadcasting.

Sector: Education Services – Adult Education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4)
Market Access (Article 7.4)

Measures: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Law No. 11690, March 23, 2013), Articles 2, 2-2 and 13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423, March 23, 2013), Article 12

Lifelong Education Act (Law No. 11770, May 22, 2013), Articles 30, 33 through 38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Law No. 11535, December 11, 2012), Article 4

Regulations on Foreign Investment and Introduction of Technology (Notic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No. 2013-37, May 30, 2013), Attached table 1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The types of adult education institutions that a foreign person may establish in Korea are limited to:

(a) *hag-won* (private teaching institutes for adults) related to lifelong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b) no later than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lifelong adult education facilities operated for purposes other than recognising educational qualifications or conferring diplomas, which include:

(i) education facilities annexed to workplaces,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schools and media organisations;

(ii) educational faciliti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and human resources; and

(iii) online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all of which are established for adults.

For the purposes of this entry, *hag-won* (private teaching institutes for adults) are facilities that provide tutoring services on subjects related to lifelong or vocational education to 10 people or more for a period of 30 days or longer.

A foreign national hired by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for adults as a lecturer must possess at least a bachelor's degree or the equivalent and reside in Korea.

Sector:	Education Services –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Local Presence (Article 7.5)
Measures:	*Workers'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Act* (Law No. 11690, March 23, 2013), Articles 28, 32 and 36 *Enforcement Decree of the Workers'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628, June 21, 2013), Articles 24 and 26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Workers'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No. 57, June 8, 2012), Articles 12, 14 and 18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 person that supplies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services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Sector:	Veterinary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Market Access (Article 7.4) Local Presence (Article 7.5)
Measures:	*Veterinary Affairs Act* (Law No. 11354, February 22, 2012), Articles 17, 22-2, 22-4 and 22-5 *Civil Act* (Law No. 11728, April 5, 2013), Article 32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Only a person that is a licensed *soo-eui-sa* (veterinarian) that has established an office in Korea, *dong-mul-jin-ryo-bub-in* (animal hospital legal entity) or *bee-young-ri-bub-in* (non-profit legal entity) may engage in veterinary or aquatic animal disease inspection services.

Sector:	Environmental Services – Waste Water Treatment Services, Waste Management Services, Air Pollution Treatment Services, Environmental Preventive Facilities Busines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oil Remediation and Groundwater Purification Services, and Toxic Chemical Control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Local Presence (Article 7.5)
Measures:	*Water Quality and Ecosystem Conservation Act* (Law No. 11915, July 16, 2013), Article 62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ct* (Law No. 11713, March 23, 2013), Article 15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Law No. 11464, June 1, 2012), Article 23-7 *Groundwater Act* (Law No. 11803, May 22, 2013), Article 29-2 *Clean Air Conservation Act* (Law No. 11750, April 5, 2013), Article 68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Law No. 11690, March 23, 2013), Article 54 *Toxic Chemicals Control Act* (Law No. 11690, March 23, 2013), Article 20 *Wastes Control Act* (Law No. 11965, July 30, 2013), Article 25 *Enforcement Decree of the Wastes Control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543, May 28, 2013), Article 8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 person that supplies the environmental services listed in the Sector heading must establish an office in Korea.

Sector:	Performance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7.2)
Measures:	*Public Performance Act* (Law No. 11048, September 15, 2011), Articles 6 and 7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erformance Act* (Presidential Decree No. 23759, May 1, 2012), Articles 4 and 6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Public Performance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o. 94, November 25, 2011), Article 4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No. 799, October 10, 2013), Table 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 foreign person who intends to engage in a public performance in Korea, or a person who intends to invite a foreign person to engage in a public performance in Korea must obtain a recommendation from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Sector: News Agency (*News-tong-sin-sa*)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Market Access (Article 7.4)
Local Presence (Article 7.5)

Measures: *Act on Promotion of News Communication* (Law No. 11690, March 23, 2013), Articles 7, 8, 9, 9-5, 16 and 28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News Communications (Presidential Decree No. 24183, November 20, 2012), Articles 4 and 10

Radio Waves Act (Law No. 11712, March 23, 2013), Article 20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A *news-tong-sin-sa* (news agency) organised under foreign law may supply *news-tong-sin* (news communications) in Korea only under a contract with a news agency organised under Korean law which has a radio station license, such as Yonhap News.

The following persons may not supply news agency services in Korea:

(a) a foreign government;

(b) a foreign person;

(c) an enterprise organised under Korean law whose *dae-pyo-ja* (for example, a chief executive officer, president, or similar principal senior officer) is not a Korean national or is a person not domiciled in Korea; or

(d) an enterprise organised under Korean law in which a foreign person holds 25 percent or more of share or equity interest.

The following persons may not serve as a *dae-pyo-ja* (for example, a chief executive officer, president, or similar principal senior officer) or editor of a news agency, or serve as *im-won*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Yonhap News or the News Agency Promotion Committee:

(a) a foreign national; or

(b) a Korean national not domiciled in Korea.

A foreign news agency may establish a branch or office in Korea for the sole purpose of collecting news. For greater certainty, such branch or office may not distribute *news-tong-sin* (news communications) in Korea.

The following persons may not obtain a radio station license:

(a) a foreign national;

(b) a foreign government or its representative; or

(c) an enterprise organized under foreign law.

Sector:	Manufacturing of Biological Products
Obligations Concerned: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Measures:	*Pharmaceutical Affairs Act* (Law No. 12074, August 13, 2013), Article 42 *Regulations on Safety of Pharmaceuticals, Etc*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No. 1022, March 23, 2013), Article 11
Description:	Investment A person who manufactures blood products must procure raw blood materials from a blood management body in Korea.

Sector:	Publishing of Periodicals (Excluding Newspaper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Market Access (Article 7.4) Local Presence (Article 7.5)
Measures:	*Act on the Promotion of Periodicals including Magazine, Etc.* (Law No. 11690, March 23, 2013), Articles 20 and 29 *Enforcement Decree of Act on the Promotion of Periodicals including Magazine, Etc.* (Presidential Decree No. 23807, May 23, 2012), Articles 17 through 20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A person who is not a Korean national must not be the publisher or the editor-in-chief of an enterprise that publishes periodicals. The following persons may not publish periodicals in Korea: (a) a foreign government or a foreign person; (b) an enterprise organised under Korean law whose *dae-pyo-ja* (for example, a chief executive officer, president, or similar principal senior officer) is not a Korean national; or (c) an enterprise organised under Korean law in which a foreign person holds 50 percent or more of share or equity interest. A foreign person that publishes periodicals may establish a branch or office in Korea subject to authorisation from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From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such branch or office may print and distribute its periodicals in Korea in the original language, provided that such periodicals are edited in the territory of Australia.

Sector: Distribution Services – Agriculture and Livestock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Market Access (Article 7.4)

Measures:

Grain Management Act (Law No. 11641, March 22, 2013), Article 12

Livestock Industry Act (Law No. 11690, March 23, 2013), Articles 30 and 34

Seed Industry Act (Law No. 11704, March 23, 2013), Article 142

Feed Management Act (Law No. 11690, March 23, 2013), Article 6

Ginseng Industry Act (Law No. 11690, March 23, 2013), Article 20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Law No. 11535, December 11, 2012), Article 4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638, June 28, 2013), Article 5

Regulations on Foreign Investment and Introduction of Technology (Notic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No. 2013-37, May 30, 2013), Attached table 2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Law No. 12059, August 13, 2013), Articles 15, 17 and 43

Notice on TRQ Products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Notice No. 2013-29, May 16, 2013), Articles 14 and 20-2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A foreign person may not hold 50 percent or more of the shares or equity interest of an enterprise engaged in *yook-ryu* (meat) wholesaling.

Only the Livestock Cooperatives under the *Agriculture Cooperative Act* may establish and manage a *ga-chook-sijang* (livestock market) in Korea.

Only a local government may establish a *gong-yeong-domae-sijang* (public wholesale market).

Only producers' organisations 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prescrib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may establish a *gong-pan-jang* (joint wholesale market).

For greater certainty, Articles 7.2 (National Treatment) and 7.4 (Market Access) do not prevent Korea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administration of the WTO Tariff-Rate-Quota.

Sector: Communication Services – Broadcasting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Performance Requirement (Article 11.9)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Market Access (Article 7.4)
Local Presence (Article 7.5)

Measures:

Broadcasting Act (Law No. 12093, August 13, 2013) Articles 8, 9, 12, 13 through 18, 48, and 69 through 71

Enforcement Decree of the Broadcasting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763, September 26, 2013), Article 57

Korea Educational Broadcasting Corporation Act (Law No. 12093, August 13, 2013), Article 11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Neither a foreign national nor a Korean national who serves as a *dae-pyo-ja* (for example, a chief executive officer, president, or similar principal senior officer) of a foreign enterprise may serve as a *dae-pyo-ja* (for example, a chief executive officer, president, or similar principal senior officer) or chief programmer of a terrestrial broadcaster, satellite broadcasting operator, cable system operator, program provider, signal transmission network business operator, audio cable operator, or relay-only cable operator.

All members of the boards of directors of the Korea Broadcasting System (KBS) and the Korea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EBS) must be Korean nationals.

A license for a terrestrial broadcaster, cable system operator, satellite broadcasting operator, signal transmission network business operator, or a program provider may only be granted to or held by the Government of Korea, a local government, or a juridical person organised under Korean law.

A license for a relay-only cable operator or an audio cable operator may only be granted to or held by the Government of Korea, a local government, or a Korean person.

A license for a terrestrial broadcaster, relay-only cable operator, cable system operator, satellite broadcasting operator, or a program provider that is engaged in *jong-hap-pyeon-sung* (multi-genre programming), home shopping, or *bo-do* (news reporting) is granted through *heo-ga* (permission), whereas a license for a signal transmission network business operator, audio cable operator or a program provider that is not engaged in *jong-hap-pyeon-sung* (multi-genre programming), home shopping, or *bo-do* (news reporting) is granted through *deung-rok* (registration).

A foreign government, foreign person, or deemed foreign person may not hold:

(a) an equity interest in a terrestrial broadcaster, relay-only cable operator, or program provider that is engaged in *jong-hap-pyeon-sung* (multi-genre programming) or *bo-do* (news reporting);

(b) in the aggregate more than 33 percent of the total issued stocks or equity interest of a satellite broadcasting operator; or

(c) in the aggregate more than 49 percent of the total issued stocks or equity interest of a cable system operator, a signal transmission network business operator, or a program provider that is not engaged in *jong-hap-pyeon-sung* (multi-genre programming) or *bo-do* (news reporting).

For transparency purposes, no single person (including "specially related person" under Article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roadcasting Act*) may hold in the aggregate more than 30 per cent of the total issued stocks or equity interest of a terrestrial broadcaster or a program provider that is engaged in *jong-hap-pyeon-sung* (multi-genre programming) or *bo-do* (news reporting), unless such broadcaster primarily provides religious or missionary content. Such limitations do not apply to the Government of Korea and a corporation established by a special law (for example,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MBC), which is established under *the Foundation for Broadcast Culture Act*).

A terrestrial broadcaster, program provider, cable system operator, or satellite broadcasting operator must include Korean content of at least the ratio publicly notified b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within the limit referred to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 in the case of a terrestrial broadcaster or program provider that uses terrestrial broadcasting to provide its programming, not less than 60 percent but not more than 80 percent of the quarterly programming hours per channel;

(b) in the case of a cable system operator or a satellite broadcasting operator, not less than 40 percent but not more than 70 percent of the quarterly programming hours per channel; and

(c) in the case of a program provider that does not use terrestrial broadcasting to provide its programming, not less than 20 percent but not more than 50 percent of the quarterly programming hours per channel.

A broadcaster must include domestically produced movies, animations and popular music of at least the ratio publicly notified b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within the limit referred to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 movies: not less than 20 but not more than 40 percent of the yearly programming hours of the channel concerned;

(b) animations: not less than 30 but not more than 50 percent of the yearly programming hours of the channel concerned; and

(c) popular music: not less than 50 but not more than 80 percent of the yearly programming hours of the channel concerned.

However, a broadcaster engaged in specialised programming pertaining to religion or education must include domestically produced movies and animations of at least the ratio publicly notified b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within the limit of not more than 40 percent of the yearly programming hours of movies or animations of the channel concerned.

Korea shall permit no more than 60 percent of a terrestrial broadcaster's, cable system operator's, satellite broadcasting operator's, or program provider's quarterly programming hours of foreign content per genre to be foreign content of a single country (single-country content ceiling).

For the purposes of this entry:

(a) "program provider engaged in *jong-hap-pyeon-sung* (multi-genre programming)" means a program provider that offers a combination of news, entertainment, drama, movies, music programming, etc.;

(b) "deemed foreign person" means a juridical person organised under Korean law in which a foreign government or a foreign person holds in the aggregate more than 50 percent of the juridical person's total issued stocks or equity interest, or whose largest shareholder is a foreign government or a foreign person; and

(c) a "satellite broadcasting operator" includes an operator that uses or leases capacity on a satellite registered in a foreign country.

Sector:	Energy Industry – Electric Power Generation Other Than Nuclear Power Generation; Electric Power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Sal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11.3)[1]
Measures: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Law No. 11845, May 28, 2013), Article 168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697, August 27, 2013), Article 187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Law No. 11535, December 11, 2012), Articles 4 and 5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638, June 28, 2013), Article 5 *Consolidated Public Notice for Foreign Investment* (Public Notic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No. 2013-102, May 27, 2013), Attached Table *Designation of Public Corporation* (Notice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No. 2000-17, September 28, 2000)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Regulation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Notice No. 2013-40, December 4, 2013), Article 6-2
Description:	Investment The aggregate foreign share of KEPCO's issued stocks may not exceed 40 percent. A foreign person may not become the largest shareholder of KEPCO. The aggregate foreign share of power generation facilities, including cogeneration facilities of heat and power (GHP) for the district heating system (DHS), may not exceed 30 percent of the total facilities in the territory of Korea. The aggregate foreign share of electric power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sales businesses should be less than 50 percent. A foreign person may not be the largest shareholder.

[1] Paragraph (a) of the 10th entry of Korea's Schedule to Annex II does not apply to this entry.

Sector:	Energy Industry – Gas Industry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11.3)[2]
Measures:	*Act on the Improvement of Managerial Structure and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s* (Law No. 11845, May 28, 2013), Article 19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Law No. 11845, May 28, 2013), Article 168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Law No. 11535, December 11, 2012), Articles 4 and 5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Korea Gas Corporation* (August 9, 2013), Article 11
Description:	Investment Foreign persons may not own in the aggregate more than 30 per cent of the equity of KOGAS.

[2] Paragraph (a) of the 10th entry of Korea's Schedule to Annex II does not apply to this entry.

Sector:	Recreational, Cultural, and Sporting Services – Motion Picture Projection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Market Access (Article 7.4)
Measures:	*Act on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Law No. 11902, July 16, 2013), Articles 2, 27 and 40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Presidential Decree No. 24036, August 13, 2012), Article 19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Cinema operators must project Korean motion pictures for at least 73 days per year at each screen in Korea.

ANNEX I
SCHEDULE OF AUSTRALIA

Introductory Note for the Schedule of Australia

Australia reserves the right to maintain and to add to this Schedule any non-conforming measure at the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that existed at 1 January 2005, but was not listed in this Schedule at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gainst the following obligations:

(a) Article 7.2 (National Treatment –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or 11.3 (National Treatment – Investment);

(b) Article 7.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or 11.4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 Investment);

(c) Article 7.5 (Local Presence –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d) Article 11.9 (Performance Requirements – Investment); or

(e) Article 11.10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 Investment).

Sector: All Sector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11.3)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Level of Government: Central and Regional

Source of Measure: Australia's foreign investment policy, which includes the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 (Cth) (FATA);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Regulations 1989* (Cth); *Financial Sector (Shareholdings) Act 1998* (Cth); and Ministerial Statements.
Land Act 1994 (Qld)
Foreign Ownership of Land Register Act 1988 (Qld)

Description: Investment

Commonwealth

A. The following investments may be subject to objections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and may also require notification to the Government[1]:

(a) investments by foreign persons[2] of five per cent or more in the media sector, regardless of the value of the investment;

(b) investments by foreign persons in existing[3] Australian businesses, or prescribed corporations[4], the value of whose assets exceeds $A248 million[#] in the following sectors:

(i)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ii) the transport sector, including airports, port facilities, rail infrastructure, international and domestic aviation and shipping services provided either within, or to and from, Australia;

(iii) the supply of training or human resources, or the manufacture or supply of military goods, equipment, or technology, to the Australian or other defence forces;

(iv) the manufacture or supply of goods, equipment or technologies able to be used for a military purpose;

(v) the development, manufacture or supply of, or provision of services relating to, encryption and security technologies and communication systems; and

(vi) the extraction of (or rights to extract) uranium or plutonium, or the operation of nuclear facilities;

(c) investments by foreign persons in existing Australian businesses, or prescribed corporations, in all other sectors, excluding financial sector companies[5], the value of whose total assets exceeds $A1078 million[#];

---

[1]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 (FATA). "Investments" means activities covered by Part II of FATA or, where applicable, ministerial statements on foreign investment policy. Funding arrangements that include debt instruments having quasi-equity characteristics will be treated as direct foreign investment.

[2] A "foreign person" means, as defined in section 5 of the FATA:

(a) a natural person not ordinarily resident in Australia;

(b) a corporation in which a natural person not ordinarily resident in Australia or a foreign corporation holds a controlling interest;

(c) a corporation in which two or more persons, each of whom is either a natural person not ordinarily resident in Australia or a foreign corporation, hold an aggregate controlling interest;

(d) the trustee of a trust estate in which a natural person not ordinarily resident in Australia or a foreign corporation holds a substantial interest; or

(e) the trustee of a trust estate in which two or more persons, each of whom is either a natural person not ordinarily resident in Australia or a foreign corporation, hold an aggregate substantial interest.

[3] For the purposes of this entry, "existing" means in existence at the time the investment is proposed or made.

[4] For the purposes of this entry, "prescribed corporation" means:

(a) a trading corporation;

(b) a financial corporation;

(c) a corporation incorporated in a Territory under the law in force in that Territory relating to companies;

(d) a foreign corporation that, on its last accounting date, held assets the sum of the values of which exceeded $A248 million (for item (b) of the entry) or $A1078 million (for item (c) of the entry), being assets consisting of all or any of the following:

(i) land situated in Australia (including legal and equitable interests in such land);

(ii) mineral rights;

(iii) shares in a corporation incorporated in Australia;

(e) a foreign corporation that was, on its last accounting date, a holding corporation of an Australian corporation or Australian corporations, where the sum of the values on that date of the assets of the Australian corporation or Australian corporations exceeded $A248 million (for item (b) of the entry) or $A1078 million (for item (c) of the entry);

(f) a corporation that was, on its last accounting date, a holding corporation of an foreign corpor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d) or (e) of this footnote;

(g) a foreign corporation that, on its last accounting date, held assets of a kind or kinds referred to in paragraph (d) of this footnote, where the sum of the values on that date of those assets was not less than one-half of the sum of the values on that date of the assets of the foreign corporation and of all the subsidiaries of that corporation; or

(h) a foreign corporation that was, on its last accounting date, a holding corporation of an Australian corporation or Australian corporations, where the sum of the values on that date of the assets of that Australian corporation or those Australian corporations was not less than one-half of the sum of the values on that date of the assets of the foreign corporation and of all the subsidiaries of that corporation.

[#] This is the figure as at 1 January 2013. To be indexed on 1 January each year to the GDP implicit price deflator in the Australian National Accounts for the previous financial year. If the Agreement has not entered into force by 1 January 2014, this figure will be indexed on entry into force.

[5] A "financial sector company" means, as defined in section 3 of the *Financial Sector (Shareholdings) Act 1998*:

(a) an authorised deposit-taking institution;

(b) an authorised insurance company; or

(c) a holding company of a company covered by paragraph (a) or (b) of this footnote.

[#] This is the figure as at 1 January 2013. To be indexed on 1 January each year to the GDP implicit price deflator in the Australian National Accounts for the previous financial year. If the Agreement has not entered into force by 1 January 2014, this figure will be indexed on entry into force.

(d) acquisitions by foreign persons of developed non-residential commercial real estate valued at more than $A1078 million#;

(e) direct investments by foreign government investors, irrespective of size;

Notified investments may be refused, subject to interim orders, and/or approved subject to compliance with certain conditions. Investments referred to in (a) through (e) for which no notification is required or received may be subject to orders under Sections 18 through 21 and 21A of the FATA.

B. The acquisition of a stake in an existing financial sector company by a foreign investor, or entry into an arrangement by a foreign investor, that would lead to an unacceptable shareholding situation or to practical control[6] of an existing financial sector company, may be refused, or be subject to certain conditions[7].

C. In addition to the measures identified in this entry, other entries in Annex I or Annex II set out additional non-conforming measures imposing specific limits on, or requirements relating to, foreign investment in the following areas:

(a) Telstra;
(b) Commonwealth Serum Laboratories;
(c) Qantas Airways Ltd.;
(d) Australian international airlines, other than Qantas;
(e) urban land;
(f) federal leased airports;
(g) agricultural land;
(h) agribusiness; and
(i) shipping.

Queensland

Certain leases (obtained at ballot), and other leases at the discretion of the Minister, may be subject to a condition that the lessee personally lives on the lease for the first seven years of its term.

While all changes to ownership of land must be registered, there is an additional duty on foreign land holders to disclose, through a prescribed notification, present interests in and acquisitions of land, disposal of interests in land and notification on ceasing to be or becoming a foreign person.

Failure to provide the information causes a breach of the Act that may result in prosecution, the imposition of financial penalties and/or forfeiture of the interest in the land to the Crown.

[6] "Unacceptable shareholding situation" and "practical control" as defined in the *Financial Sector (Shareholdings) Act 1998*.

[7] Ministerial statements on foreign investment policy including the Treasurer's Press Release No. 28 of 9 April 1997.

Sector:	All Sectors
Obligations Concerned: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Level of Government:	Central
Source of Measure:	*Corporations Act 2001* (Cth) *Corporations Regulations 2001* (Cth)
Description:	Investment At least one director of a private company must be ordinarily resident in Australia. At least two directors of a public company must be ordinarily resident in Australia.

Sector:	All Sector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Local Presence (Article 7.5)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Level of Government:	Regional
Source of Measure:	*Associations Act* (NT) *Associations Incorporations Act 1991* (ACT) *Associations Incorporations Act 1981* (Qld) *Associations Incorporation Act 1985* (SA) *Associations Incorporation Act 1964* (Tas) *The Associations Incorporation Reform Act 2012* (Vic)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Northern Territory An application for the incorporation of an association[8] must be made by a person who is a resident of the Northern Territory. The public officer of an incorporated association must be a person who is a resident of the Northern Territory.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n application for incorporation of an association must be made by a person who is a resident of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The public officer of an incorporated association must be a person who is a resident of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Queensland The office of secretary shall become vacant if the person holding that office ceases to be a resident in Queensland, or in another State but not more than 65km from the Queensland border. The management committee of an incorporated association must ensure the secretary is an individual residing in Queensland, or in another State but not more than 65km from the Queensland border. The members of the management committee of an incorporated association must ensure that the association has an address nominated for the service of documents on the association. The nominated address must be a place in the State where a document can be served personally on a person. A post office box is not a place that can be shown as a nominated address. South Australia

[8] "Association" includes a trading association.

The public officer of an incorporated association must be a person who is a resident of South Australia.

Tasmania

A person is not eligible to be appointed as a public officer of an incorporated association unless the person is resident in Tasmania.

Victoria

A person applying for the incorporation of an association must be an Australian resident.

The first secretary and secretary of an incorporated association must be Australian residents and the first secretary of an association applying for incorporation must be an Australian resident.

The first secretary of an amalgamated association must be an Australian citizen.

Sector: All Sectors

Obligations Concerned: Local Presence (Article 7.5)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Level of Government: Regional

Source of Measure: *Cooperatives Act 2002* (ACT)
Co-operatives (Adoption of National Law) Act 2012 (NSW)
Co-operatives Act (NT)
Cooperatives Act 1997 (Qld)
Co-operatives Act 1997 (SA)
Cooperatives Act 1999 (Tas)
Co-operatives National Law Application Act 2013 (Vic)
Co-operatives Act 2009 (WA)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All Australian States and Territories

Except for South Australia, a cooperative must have a registered office in each state or territory in which it operates. In South Australia registers must be kept at an office in South Australia.

The secretary of a cooperative must be a person ordinarily resident in Australia.

A foreign cooperative must appoint a person who will act as agent of the cooperative in each state or territory in which it operates.

A foreign cooperative must appoint a person resident in each state or territory in which it operates as a person on whom all notices and legal process may be served on behalf of the cooperative.

At least two of the directors of a cooperative must be Australian residents.

Sector:	All Sectors
Obligations Concerned:	Local Presence (Article 7.5)
Level of Government:	Regional
Source of Measure:	*Partnership Act 1963* (ACT) *Partnership Act 1892* (NSW) *Partnership Act 1997* (NT) *Partnership Act 1891* (Qld) *Partnership Act 1891* (SA) *Partnership Act 1891* (Tas) *Partnership Act 1958* (Vic)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New South Wales, Northern Territory, Queensland, South Australia, Tasmania and Victoria A limited partnership or an incorporated limited partnership established in a State or Territory must have an office, principal office or registered office in that State or Territory.

Sector:	Security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Level of Government:	Regional
Source of Measure:	*Security Industry Act 1997* (NSW)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A person must be an Australian citizen or an Australian permanent resident to obtain a licence to carry on a security activity in New South Wales.

Sector:	All Sectors
Obligations Concerned:	Local Presence (Article 7.5)
Level of Government:	Regional
Source of Measure:	*Consumer Affairs and Fair Trading Act* (NT) *Consumer Affairs and Fair Trading (Trading Stamps) Regulations* (NT)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 promoter of a third party trading scheme[9] must maintain an office in Australia.

[9] "Third party trading scheme" means a scheme or arrangement under which the acquisition of goods or services by a consumer from a supplier is a condition, which gives rise, or apparently gives rise, to an entitlement to a benefit from a third party in the form of goods or services or some discount, concession or advantage in connection with the acquisition of goods or services.

Sector:	Professional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Level of Government:	Regional
Source of Measure:	*Legal Practitioners Act 1981* (SA)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A company that is a subsidiary of a foreign law firm is not permitted to obtain a practising certificate and is not permitted to share profits with any other company or firm. Foreign natural persons practising foreign law may only join a local law firm as a consultant and may not enter into partnership with or employ local lawyers in South Australia. (A person is not taken to be practising the profession of the law if he or she is only providing legal advice or services relating to the law of a place outside Australia.)

Sector:	Professional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Local Presence (Article 7.5)
Level of Government:	Central
Source of Measure:	*Patents Act 1990* (Cth) *Patent Regulations 1991* (Cth)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In order to register to practise in Australia, patent attorneys must be ordinarily resident in Australia[10].

[10] For the purposes of this entry, a person is taken to be "ordinarily resident" in Australia if the person has his or her home in Australia or Australia is the country of his or her permanent abode even though he or she is temporarily absent from Australia. However, the person is taken not to be ordinarily resident in Australia if he or she resides in Australia for a special or temporary purpose only.

Sector:	Professional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Local Presence (Article 7.5)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Level of Government:	Regional
Source of Measure:	*Trustee Companies Act 1947* (ACT) *Trustee Companies Act 1964* (NSW) *Companies (Trustees and Personal Representatives) Act 1981* (NT) *Trustee Companies Act 1968* (Qld) *Trustee Companies Act 1988* (SA) *Trustee Companies Act 1953* (Tas) *Trustee Companies Act 1984* (Vic) *Trustee Companies Act 1987* (WA)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Northern Territory A body corporate may not obtain a grant of probate or act as an executor of a will or trustee of an estate of a deceased person unless it is a "licensed trustee company" as defined in section 601RAA of the *Corporations Act 2001* (Cth), or a body corporate authorised by a law of the Northern Territory to obtain a grant of probate and so act. Western Australia A company can only act as a trustee company in Western Australia if it is a "licensed trustee company" as defined in section 601RAA of the *Corporations Act 2001* (Cth). All other Australian states and territories A body corporate may not obtain a grant of probate or act as an executor of a will and any codicil unless it is a "licensed trustee company" within the meaning of Chapter 5D of the *Corporations Act 2001* (Cth).

Sector:	Professional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Local Presence (Article 7.5)
Level of Government:	Central and Regional
Source of Measure:	*Corporations Act 2001* (Cth) *Co-operative Housing and Starr-Bowkett Societies Act 1998* (NSW) *Legal Practitioners Act 1981* (SA) *Legal Practitioners Regulations 2009* (SA) *Estate Agents Act 1980* (Vic)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Commonwealth A person who is not ordinarily resident in Australia may be refused registration as a company auditor or liquidator. At least one partner in a firm providing auditing services must be a registered company auditor who is ordinarily resident in Australia. New South Wales A person must be ordinarily resident in New South Wales in order to be an auditor of specified kinds of societies and associations. South Australia Persons who provide auditing services for legal practitioners' trust accounts must be public accountants engaged as a principal in practice in South Australia. Victoria A firm of auditors cannot audit an estate agent's accounts unless at least one member of the firm of auditors is an Australian resident.

Sector:	Professional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Local Presence (Article 7.5)
Level of Government:	Regional
Source of Measure:	*Architects Act* (NT)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To qualify for registration as an architectural partnership or company, the partnership/company must have a place of business or be carrying on business within the Northern Territory.

Sector:	Professional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7.2)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 7.3)
Level of Government:	Central
Source of Measure:	*Migration Act 1958* (Cth)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To practise as a migration agent in Australia, a person must be an Australian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or a citizen of New Zealand with a special category visa.

Sector:	Professional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Local Presence (Article 7.5)
Level of Government:	Central
Source of Measure:	*Customs Act 1901* (Cth)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To act as a customs broker in Australia, service suppliers must provide the service in and from Australia.

Sector: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Level of Government:	Regional
Source of Measure:	*Biodiscovery Act 2004* (Qld)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Benefit sharing agreements require sublicences for use of samples or derivates to conduct biodiscovery research and commercialisation to be offered first to Queensland-based entities, then to Australian-based entities, and then to overseas-based entities. Any entity with a benefit sharing agreement must obtain consent before granting a sublicence to an overseas-based entity.

Sector:	Real Estate and Distribution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Article 11.3) Local Presence (Article 7.5)
Level of Government:	Regional
Source of Measure:	*Community Land Management Act 1989* (NSW) *Strata Schemes Management Act 1996* (NSW) *Property, Stock and Business Agents Act 2002* (NSW) *Agents Licensing Act* (NT) *Agents Act 2003* (ACT) *Property Agents and Motor Dealers Act 2000* (Qld) *Estate Agents Act 1980* (Vic) *Conveyancers Act 2006* (Vic) *Real Estate and Business Agents Act 1978* (WA) *Real Estate and Business Agents (General) Regulations 1979* (WA) *Settlement Agents Act 1981* (WA) *Settlement Agents Regulations 1982* (WA)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New South Wales A person cannot be appointed as an agent (for a proprietor of a development lot, neighbourhood lot or strata lot) if they are not an Australian resident. A person cannot be appointed as an agent (for an owner of a lot, for dealings with the owner's corporation) if they are not an Australian resident. To be licensed as a property, stock, business, strata managing or community managing agent in New South Wales, licensees must have a registered office in New South Wales. Northern Territory A licensed agent[11] must maintain an office in Australia at or from which the conduct of business under the licence is to occur.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n estate agent must have their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Queensland In order to operate as a real estate agent, auctioneer, motor dealer or commercial agent, a person must have a business address in Queensland. This must be a physical address and not a post box. Victoria A person cannot be licensed as an estate agent unless they have a registered office in Victoria and they must maintain a principal

[11] A "licensed agent" includes a real estate agent, business agent or conveyancing agent.

office in Victoria. An agent's representative must have a registered address in Victoria to which documents can be sent.

A person cannot be licensed as a conveyancer or carry on a conveyancing business in Victoria unless they maintain a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Victoria.

Western Australia

A person seeking to carry on business as a real estate or business agent in Western Australia must establish and maintain a registered office in the State.

A person seeking to carry on business as a settlement agent (conveyancer) in Western Australia must ordinarily reside in the State.

A licensed settlement agent must establish and maintain a registered office in the State.

Sector: Fishing and Pearling

Obligations Concerned: Local Presence (Article 7.5)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Level of Government: Central and Regional

Source of Measure: *Fisheries Management Act 1991* (Cth)
Foreign Fishing Licences Levy Act 1991 (Cth)
Fisheries Management Act 1994 (NSW)
Fisheries Act 1995 (Vic)
Fish Resources Management Act 1994 (WA)
Pearling Act 1990 (WA)
Ministerial Policy Guideline No. 17 of August 2001 (WA)

Description: Cross 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Commonwealth

Foreign fishing vessels[12] seeking to undertake fishing activity in the Australian Fishing Zone must be authorised.

Where foreign fishing vessels are authorised to undertake such fishing activity, they may be subject to a levy[13].

New South Wales

A foreign person or a foreign-owned body is not permitted to hold shares in a share management fishery.

Victoria

A fishery access licence or aquaculture licence can only be issued to a natural person who is an Australian resident, or to a single corporation that has a registered office in Australia.

Western Australia

Only an individual who is an Australian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may be a licensee within the Western Australian pearling industry.

In the case of corporations, partnerships or trusts holding licenses, these must be Australian owned and/or controlled (at least 51 per cent of the issued share capital, partnership interest or trust property must be owned by Australians; the chairman, maj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all the company officers must be Australians and must be nominated by, and represent, Australian

[12] For the purposes of this reservation, a "foreign fishing vessel" is one that does not meet the definition of an Australian boat under the *Fisheries Management Act 1991* (Cth), that is, an Australian-flagged boat (not owned by a foreign resident) or a boat owned by an Australian resident or corporation and built, and whose operations are based, in Australia.

[13] The levy charged will be in accordance with the *Foreign Fishing Licences Levy Act 1991* or any amendments thereto.

(Interests).

Sector:	Mining and Related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Level of Government:	Regional
Source of Measure:	*Mount Isa Mines Limited Agreement Act 1985* (Qld)
Description:	Investment

The operator of Mount Isa Mines shall, so far as is reasonably and economically practicable:

(a) use the services of professional consultants resident and available within Queensland;

(b) use labour available within Queensland;

(c) when preparing specifications, calling for tenders and letting contracts for works, materials, plant, equipment and supplies ensure that Queensland suppliers, manufacturers, and contractors are given reasonable opportunity to tender or quote; and

(d) give proper consideration and where possible preference to Queensland suppliers, manufacturers and contractors when letting contracts or placing orders for works, materials, plant, equipment and supplies where price, quality, delivery and service are equal to or better than that obtainable elsewhere.

Sector:	Distribution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Level of Government:	Regional
Source of Measure:	*Rice Marketing Act 1983* (NSW) *Marketing of Potatoes Act 1946* (WA)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New South Wales retains marketing board arrangements for rice and Western Australia retains marketing board arrangements for potatoes.

Sector:	Other Business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Local Presence (Article 7.5)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Level of Government:	Regional
Source of Measure:	*Prostitution Regulation Act* (NT)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To be eligible for the grant of an operator's licence or a manager's licence in respect of an escort agency business, an individual must be resident in the Northern Territory. For a body corporate to be granted an operator's licence, its officers must also meet the residency requirement.

Sector:	Communication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11.3)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Level of Government:	Central
Source of Measure:	*Telstra Corporation Act 1991* (Cth)
Description:	Investment Aggregate foreign equity is restricted to no more than 35 per cent of shares of Telstra. Individual or associated group foreign investment is restricted to no more than five per cent of shares. The chairperson and a majority of directors of Telstra must be Australian citizens and Telstra is required to maintain its head office, main base of operations and place of incorporation in Australia.

Sector:	Distribution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Local Presence (Article 7.5)
Level of Government:	Regional
Source of Measure:	*Firearms Act* (NT)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Grant of a firearms licence[14] requires residency in the Northern Territory. Licences and permits expire three months after the holder ceases to reside permanently in the Northern Territory.

[14] Firearms licence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firearms dealer's licence, armourer's licence, firearms museum licence, firearms collector's licence, firearms employee licence and paintball operator's licence.

Sector:	Distribution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Local Presence (Article 7.5)
Level of Government:	Regional
Source of Measure:	*Liquor Act* (NT) and policy and practice *Kava Management Act* (NT) *Tobacco Control Act* (NT) and policy and practice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The Northern Territory Licensing Commission may require a liquor licensee where the licensee is an individual, or at least one of the licensees where the licence is held by a partnership, or the licence nominee where the licence is held by a corporation, to ordinarily reside within the general locality of the premises to which the licence relates.

The holder of a tobacco retail licence may only sell tobacco products from the premises specified in the licence.

A tobacco retail licence in relation to liquor licensed premises may only be granted to the liquor licensee of those premises.

An applicant for a retail licence for kava must ordinarily reside or carry on business in the relevant licence area in the Northern Territory.

Sector:	Distribution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Level of Government:	Regional
Source of Measure:	*Wine Industry Act 1994* (Qld)
Description:	Investment

In order to obtain a wine merchant's licence to sell wine, the business conducted by a person under the licence must contribute to the Queensland wine industry in a substantial way. In order to obtain a wine producer's licence to sell wine, a person must be selling wine made from fruit grown by the person on the premises to which the licence relates, or selling wine made by the person on the premises to which the licence relates.

Sector:	Health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11.3)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Level of Government:	Central
Source of Measure:	*Commonwealth Serum Laboratories Act 1961* (Cth)
Description:	Investment The votes attached to significant foreign shareholdings[15] may not be counted in respect of the appointment, replacement or removal of more than one-third of the directors of Commonwealth Serum Laboratories (CSL) who hold office at a particular time. The head office, principal facilities used by CSL and any CSL subsidiaries used to produce products derived from human plasma collected from blood or plasma donated by individuals in Australia must remain in Australia. Two-thirds of the directors of the board of CSL and the chairperson of any meeting must be Australian citizens. CSL must not seek incorporation outside of Australia.

[15] For the purposes of this entry, "significant foreign shareholding" means a holding of voting shares in CSL in which a foreign person has a relevant interest, if the foreign person has relevant interests in at least five per cent of the voting shares in CSL.

Sector:	Tourism and Travel-related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Local Presence (Article 7.5)
Level of Government:	Regional
Source of Measure:	*Travel Agents Act 1988* (Qld) *Travel Agents Act 1985* (WA) *Travel Agents Regulations 1986* (WA)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Queensland In order to obtain a licence to operate as a travel agent, a person must have a business address in Queensland. Western Australia To carry on business in Western Australia as a travel agent, a person must have a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the state.

Sector:	Recreational, Cultural and Sporting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Local Presence (Article 7.5)
Level of Government:	Regional
Source of Measure:	*Nature Conservation Act 1992* (Qld) *Nature Conservation (Wildlife Management) Regulation 2006* (Qld) *Nature Conservation (Administration) Regulation 2006* (Qld) *Nature Conservation (Protected Plants) Conservation Plan* 2000 (Qld)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The Chief Executive of the Queensland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Heritage Protection may grant a wildlife authority[16], other than a wildlife movement permit, to a corporation only if the corporation has an office in the State. The Chief Executive may approve a person to be an authorised cultivator or propagator for protected plants only if: (a) in the case of a natural person, the person is a resident of the State; or (b) if the person is a corporation, the corporation has premises in the State at which the plants are to be cultivated or propagated. An individual or corporation is only taken to be a "person aggrieved" by a decision, failure to make a decision or conduct under the Act if the individual is an Australian citizen or ordinarily resident in Australia or, if a corporation, established in Australia.

[16] This term is defined in Schedule 7 of the *Nature Conservation (Administration) Regulation 2006* (Qld).

Sector:	Transport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Local Presence (Article 7.5)
Level of Government:	Central
Source of Measure: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Cth)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Every ocean carrier who provides international liner cargo shipping services to or from Australia must, at all times, be represented by a natural person who is resident in Australia. Only a person[17] affected by a registered conference agreement or by a registered non-conference ocean carrier with substantial market power may apply to the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to examine whether conference members, and non-conference operators with substantial market power, are hindering other shipping operators from engaging efficiently in the provision of outward liner cargo services to an extent that is reasonable. For greater certainty, matters which are relevant to the determination of 'reasonable' include Australia's national interest and the interests of Australian shippers.

[17] For the purposes of this entry, section 10.48 and 10.58 of Part X of the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list the categories of persons to whom this reservation will apply.

Sector:	Transport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11.3)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Level of Government:	Central
Source of Measure:	*Air Navigation Act 1920* (Cth) Ministerial Statements
Description:	Investment

Total foreign ownership of individual Australian international airlines (other than Qantas) is restricted to a maximum of 49 per cent.

Furthermore, it is required that:

(a) at least two-thirds of the board members must be Australian citizens;

(b)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must be an Australian citizen;

(c) the airline's head office must be in Australia; and

(d) the airline's operational base must be in Australia.

Sector:	Transport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11.3)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11.10)
Level of Government:	Central
Source of Measure:	*Qantas Sale Act 1992* (Cth)
Description:	Investment

Total foreign ownership of Qantas Airways Ltd is restricted to a maximum of 49 per cent in aggregate, with individual foreign holdings limited to 25 per cent and aggregate holdings by foreign airlines to 35 per cent. In addition:

(a) the head office of Qantas must always be located in Australia;

(b) the majority of Qantas' operational facilities must be located in Australia;

(c) at all times, at least two-thirds of the directors of Qantas must be Australian citizens;

(d) at a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Qantas, the director presiding at the meeting (however described) must be an Australian citizen; and

(e) Qantas is prohibited from taking any action to become incorporated outside Australia.

Sector:	Transport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Local Presence (Article 7.5) National Treatment (Article 7.2)
Level of Government:	Regional
Source of Measure:	*Commercial Passenger (Road Transport) Act* (NT) *Road Transport (Public Passenger Services) Regulations 2002* (ACT)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Northern Territory A taxi licence will be cancelled where the holder, being an individual, has not been ordinarily resident in the Northern Territory for more than six months or, being a body corporate, has ceased for more than six months to have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the Northern Territory.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n application for accreditation to run a public transport service must be made by an Australian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of Australia.

ANNEX II
Explanatory Notes

1. The Schedule of a Party to this Annex sets out, pursuant to Articles 7.6 (Non-Conforming Measures –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11.12 (Non-Conforming Measures – Investment), the specific sectors, sub-sectors or activities for which that Party may maintain existing, or adopt new or more restrictive, measures that do not conform with obligations imposed by:

   (a) Article 7.2 (National Treatment –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or 11.3 (National Treatment – Investment);

   (b) Article 7.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or 11.4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 Investment);

   (c) Article 7.4 (Market Access–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d) Article 7.5 (Local Presence–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e) Article 11.9 (Performance Requirements– Investment); or

   (f) Article 11.10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Investment).

2. Each Schedule entry sets out the following elements:

   (a) **Sector** refers to the sector for which the entry is made;

   (b) **Obligations Concerned** specifies the oblig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at, pursuant to Articles 7.6.2 and Article 11.12.2, do not apply to the sectors, sub-sectors or activities listed in the entry;

   (c) **Description** sets out the scope of the sector, sub-sector or activities covered by the entry; and

   (d) **Existing Measures** identifies, for transparency purposes, existing measures that apply to the sector, sub-sector or activities covered by the entry.

3. In accordance with Articles 7.6.2 and 11.12.2, the articles of this Agreement specified in the **Obligations Concerned** element of an entry do not apply to the sectors, sub-sectors and activities identified in the **Description** element of that entry.

4. For Korea, a "foreign person" means a foreign national or an enterprise organised under the laws of another country.

ANNEX II
SCHEDULE OF KOREA

Sector: All Sector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11.3)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Description: Investment

1.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or acquisition of an investment, any measure that is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pursuant to Article 4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2012) and Article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2012), provided that Korea promptly provides written notice to Australia that it has adopted such a measure and that the measure:

(a) is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al requirements set out in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2012),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2012), and other applicable law;

(b) is adopted or maintained only where the investment poses a genuine and sufficiently serious threat to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society;

(c) is not applied in an arbitrary or unjustifiable manner;

(d) does not constitute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vestment; and

(e) is proportional to the objective it seeks to achieve.

2. Without prejudice to any claim that may be submitted to arbitration pursuant to Article 11.16.1, a claimant may submit to arbitration under Section B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of Chapter 11 (Investment) a claim that:

(a) Korea has adopted a measure for which it has provided notice pursuant to paragraph 1; and

(b) the claimant or, as the case may be, an enterprise of Korea that is a juridical person that the claimant owns or controls directly or indirectly, has incurred loss or damage by reason of, or arising out of, the measure.

In the event of such a claim, Section B of Chapter 1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and all references in Section B of Chapter 11 to a breach, or to an alleged breach, of an obligation under Section A of Chapter 11 shall be understood to refer to the measure, which would constitute a breach of an obligation under Section A of Chapter 11 but for this entry. However, no award may be made in favour of the claimant, if Korea establishes to the satisfaction of the tribunal that the measure satisfies all the conditions listed in subparagraphs (a) through (e) of paragraph 1.

3. This entry shall not apply to the extent that a measure referred to in paragraph 1 is subject to Chapter 8 (Financial Services).

Existing Measures: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Law No. 11535, December 11, 2012), Article 4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638, June 28, 2013), Article 5

Sector:	All Sector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Local Presence (Article 7.5)
Description: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transfer or disposition of equity interests or assets held by state enterprises or governmental authorities. Such a measure shall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Chapter 19 (Transparency). Notwithstanding Article 8.9.3, this entry shall not be treated as a non-conforming measure not subject to Article 8.2 (National Treatment). This entry shall not apply to former private enterprises that are owned by the state as a result of corporate reorganisation processes. For the purposes of this entry, a state enterprise shall include any enterprise created for the sole purpose of selling or disposing of equity interests or assets of state enterprise or governmental authorities.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Without prejudice to Korea's commitments undertaken in Annex I and Annex II,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transfer to the private sector of all or any portion of services provided in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This entry shall not apply to a measure inconsistent with Article 7.2 (National Treatment) or 11.3 (National Treatment) to the extent that the measure affects the supply of express delivery services that the laws of Korea permit. This paragraph does not prevent Korea from establishing or maintaining a state enterprise. Notwithstanding Article 8.9.3, this entry shall not be treated as a non-conforming measure not subject to Article 8.2 (National Treatment).
Existing Measures: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Law No.11845, May 28, 2013), Article 168

Sector:	All sector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7.3 and 11.4) Market Access (Article 7.4) Local Presence (Article 7.5)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supply of a service by the presence of natural persons, or other movement of natural persons, including immigration, entry or temporary stay,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Chapter 10 (Movement of Natural Persons).

Sector: All Sector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7.3 and 11.4)
Market Access (Article 7.4)
Local Presence (Article 7.5)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defense industry.

Foreign investors (stipulated in Article 2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who intend to acquire the outstanding shares of a defense industry company (enterprises stipulated in Article 3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other than the newly issued ones shall obtain a prior permission from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Existing Measures: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Law No. 11535, December 11, 2012), Article 6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Law No. 11713, March 23, 2013), Article 35

Sector: Acquisition of Land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11.3)

Description: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acquisition of land by foreign persons, except that a juridical person shall continue to be permitted to acquire land where the juridical person:

(a) is not deemed foreign under Article 2 of the *Foreigner's Land Acquisition Act*, and

(b) is deemed foreign under the *Foreigner's Land Acquisition Act* or is a branch of a foreign juridical person subject to approval or no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Foreigner's Land Acquisition Act*, if the land is to be used for any of the following legitimate business purposes:

(i) land used for ordinary business activities;

(ii) land used for housing for senior management; and

(iii) land used for fulfilling land-holding requirements stipulated by pertinent laws.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acquisition of farmland by foreign persons.

Existing Measures: *Foreigner's Land Acquisition Act* (Law No. 11690, March 23, 2013), Articles 2 through 6

Farmland Act (Law No. 11694, March 23, 2013), Article 6

Sector: Firearms, Swords, Explosives, and Similar Item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Local Presence (Article 7.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firearms, swords, explosives, gas sprays, electric shocks, and crossbows sector, including the manufacture, use, sale, storage, transport, import, export, and possession of firearms, swords, explosives, gas sprays, electric shocks or crossbows.

Sector: Disadvantaged Group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7.3 and 11.4)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Local Presence (Article 7.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that accords rights or preferences to socially or economically disadvantaged groups, such as the disabled, persons who have rendered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and ethnic minorities.

Sector:	State-Owned National Electronic/Information System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Local Presence (Article 7.5)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affecting the administration and operation of any state-owned electronic information system that contains proprietary government information or information gathered pursuant to the regulatory functions and powers of the government. This entry shall not apply to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related to financial services.

Sector:	All Sector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7.3 and 11.4) Market Access (Article 7.4) Local Presence (Article 7.5)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 of law enforcement and correctional services, and the following services to the extent that they are social services established or maintained for public purposes: income security or insurance; social security or insurance; social welfare; public training; public utilities; public transport; public housing; health; and child care.

Sector: All Sectors

Obligations Concerned: Market Access (Article 7.4)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that is not inconsistent with Korea's obligations under Article XVI of GATS as set out in Korea's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under the GATS(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and GATS/SC/48/Suppl.3/Rev.1).

For the purposes of this entry only, Korea's Schedule is subject to the following modifications:

(a) for any sector and sub-sector with regard to which Korea's Annex I contains an entry (other than an entry with regard to "All Sectors") that does not list Market Access as one in the Obligations Concerned element, "None" is inscribed in the Market Access column for modes 1, 2, and 3, and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is inscribed for mode 4;

(b) for any sector and sub-sector with regard to which Korea's Annex I contains an entry (other than an entry with regard to "All Sectors") that lists a limitation to the Market Access obligation, that limitation is inscribed in the Market Access column with regard to the appropriate mode of supply; and

(c) for any sector and sub-sector listed in Appendix II-A, Korea's Schedule is modified as indicated in the Appendix II-A.

These modifications shall not affect any limitation relating to sub-paragraph (f) of paragraph 2 of Article XVI of GATS inscribed in the Market Access column of Korea's Schedule.

For greater certainty, an entry of "None" in the Market Access column of Korea's Schedule shall not be construed to alter the application of Article 7.5 (Local Presence) as modified by Article 7.6 (Non-Conforming Measures).

Sector: All Sectors

Obligations Concerned: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7.3 and 11.4)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that accords differential treatment to countries under any bilateral or multilateral international agreement in force or signed prior to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that accords differential treatment to countries under any bilateral or multilateral international agreement in force or signed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involving:

(a) aviation;

(b) fisheries; or

(c) maritime matters, including salvage.

Sector:	Communication Services – Broadcasting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7.3 and 11.4)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that accords differential treatment to persons of other countries due to the application of reciprocity measures or through international agreements involving sharing of the radio spectrum, guaranteeing market access, or national treatment with respect to the one-way satellite transmission of direct-to-home (DTH) and direct broadcasting satellite (DBS) television services and digital audio services.

Sector:	Transportation Services – Railroad Transportation
Obligations Concerned: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7.3 and 11.4)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that accords differential treatment to countries under any bilateral or multilateral international agreement in force or signed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involving railroad transportation.

Sector:	Environmental Services – Treatment and Supply Services for Potable Water; Collection and Treatment Services for Municipal Sewage; Collection, Transportation, and Disposal Services for Municipal Refuse; Sanitation and Similar Services; Nature and Landscape Protection Services (Except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Local Presence (Article 7.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following environmental services: treatment and supply of potable water; collection and treatment of municipal sewage; collection, transportation, and disposal of municipal refuse; sanitation and similar services; and nature and landscape protection services (except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ervices). This entry shall not apply to the supply of the aforementioned services pursuant to a contract between private parties, to the extent that private supply of such services is permitted under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ector:	Atomic Energy – Nuclear Power Generation: Manufacturing and Supply of Nuclear Fuel; Nuclear Materials; Radioactive Waste Treatment and Disposal (including treatment and disposal of spent and irradiated nuclear fuel); Radioisotope and Radiation Generation Facilities; Monitoring Services for Radiation; Services Related to Nuclear Energy; Planning,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Local Presence (Article 7.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atomic energy industry.

Sector:	Energy Services – Electric Power Generation Other Than Nuclear Power Generation; Electric Power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Sales; and Electricity Busines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Local Presence (Article 7.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electric power generation,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sales. Any such measure shall not decrease the level of foreign ownership permitted in the electric power industry as provided by the entry in Korea's Schedule to Annex I related to Energy Industry – Electric Power Generation Other Than Nuclear Power Generation; Electric Power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Sales. Notwithstanding this entry, Korea shall not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inconsistent with Article 11.9.1(f).

Sector:	Energy Services – Gas industry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Local Presence (Article 7.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import and wholesale distribution of natural gas and the operation of terminals and the national high pressure pipeline network. Any such measure shall not decrease the level of foreign ownership permitted in the gas industry as provided by the entry in Korea's Schedule to Annex I related to Energy Industry – Gas Industry.

Sector:	Distribution Services – Commission Agents' Services, Wholesaling and Retailing of Agricultural Raw Materials and Live Animals (*nongchuksan mul)*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Local Presence (Article 7.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a) commission agents' services of agricultural raw materials, live animals, food products, beverages; (b) wholesale trade services of grain, meat, poultry, grain powder, red ginseng, fertilisers; and (c) retail services of rice, ginseng and red ginseng.

Sector:	Transportation Services – Passenger Road Transportation Services (Taxi Services and Scheduled Passenger Road Transportation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7.3 and 11.4)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Local Presence (Article 7.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axi services and scheduled passenger road transportation services.

Sector:	Transportation Services – Freight Road Transportation Services (excluding Road Transportation Services Related to Courier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7.3 and 11.4)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Local Presence (Article 7.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freight road transportation services excluding road transportation of containerised freight (excluding cabotage) by international shipping companies and road transportation services related to courier services.

Sector:	Transportation Services – Internal Waterways Transportation Services and Space Transportation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7.3 and 11.4)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Local Presence (Article 7.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internal waterways transportation services and space transportation services.

Sector:	Transportation Services – Storage and Warehousing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storage and warehousing services related to agricultural, fishery and livestock products.

Sector:	Communication Services – Non-monopoly Postal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a) the supply of support services to postal offices by military service personnel or other personnel of equivalent status; and (b)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not needing authorisation from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determining the total number of vehicles that may belong to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nd allocating the vehicles to postal offices. The Korean Postal Authority reserves exclusive rights for collecting, processing and deliver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tters. The exclusive rights of the Korean Postal Authority include the right of access to its postal network and operation thereof.
Existing Measures:	*Postal Services Act* (Law No. 11690, March 23, 2013) *Military Service Act* (Law No. 11849, June 4, 2013) *Regulations on Management of Common-Purpose Motor Vehicles* (Presidential Decree No. 24425, March 23, 2013)

Sector:	Communication Services – Broadcasting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7.3 and 11.4)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Market Access (Article 7.4) Local Presence (Article 7.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relating to broadcasting services. Korea shall ensure that this entry is not inconsistent with the Communications Services – Broadcasting Services entry in Korea's Schedule to Annex I.
Existing Measures:	*Broadcasting Act* (Law No. 12093, August 13, 2013), Articles 8, 9, 69 through 72, 78 and 78-2 *Enforcement Decree of the Broadcasting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763, September 26, 2013), Articles 14, 50 through 58, 60 and 61-3

Sector:	Communication Services –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7.3 and 11.4)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Market Access (Article 7.4) Local Presence (Article 7.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subscription-based video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is entry, "subscription-based video services" means subscription-based video services that are supplied to end-users over dedicated transmission capacity that the supplier owns or controls (including by leasing) and includes IPTV and Interactive Broadcasting.
Existing Measures: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Act* (Law No. 11690, March 23, 2013), Articles 4, 7, 9, 18 and 21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445, March 23, 2013), Article 20

Sector:	Communication Services – Broadcasting and Audio-Visual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Most 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7.3 and 11.4)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preferential co-production arrangement for film or television productions. Official co-production status, which may be granted to a co-production produced under such a co-production arrangement, confers national treatment on works covered by a co-production arrangement.
Existing Measures:	*Act on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Law No. 11902, July 16, 2013) *Notice on Programming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Notice No. 2008-135, December 31, 2008)

Sector:	Communication Services – Broadcasting and Audio-Visual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setting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broadcasting or audio-visual programs are Korean. Korea shall ensure that this entry is not inconsistent with the Communications Services – Broadcasting Services entry in Korea's Schedule to Annex I or the Communications Services –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entry in Korea's Schedule to Annex II.
Existing Measures:	*Act on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Law No. 11902, July 16, 2013), Articles 27 and 40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Presidential Decree No. 24036, August 13, 2012), Articles 10 and 19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ct on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o.128, August 17, 2012) *Notice on Programming*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Notice No. 2008-135, December 31, 2008)

Sector:	Business Services – Real Estate Services (not including Real Estate Brokerage and Appraisal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Local Presence (Article 7.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real estate development, supply, management, sale, and rental services, except for brokerage and appraisal services.

Sector:	Business Services – Insolvency and Receivership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Local Presence (Article 7.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insolvency and receivership services.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corporate restructuring services, including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ies, corporate restructuring partnerships, and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s. For greater certainty, this entry shall not be construed to negatively affect current legitimate investment banking services subject to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Chapter 8 (Financial Services).

Sector: Digital Audio or Video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7.3 and 11.4)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Local Presence (Article 7.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any measure to ensure that, upon a finding by the Government of Korea that Korean digital audio or video content or genres thereof is not readily available to Korean consumers, access to such content is not unreasonably denied to Korean consumers. With respect to digital audio or video services targeted at Korean consumers,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any measure to promote the availability of such content.

Any measure adopted pursuant to the paragraph above shall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Chapter 19 (Transparency), as well as Article 7.8 (Transparency in Developing and Applying Regulations), as applicable, be based on objective criteria, and be no more trade-restrictive or burdensome than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this entry, "digital audio or video service" means a service that provides streaming audio content, films or other video downloads or streaming video content regardless of the type of transmission (including through the Internet), but does not include broadcasting services as defined by the *Broadcasting Act* at the time of signature of this Agreement or subscription-based video services as defined in the Communications Services –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entry in Korea's Schedule to Annex II.

Existing Measures: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Law No. 11690, March 23, 2013)

Sector: Business Services – Cadastral Surveying Services and Cadastral Map-Making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cadastral surveying services and cadastral map related services.

Sector:	Business and Environmental Services – Examination, Cer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of Agricultural Raw Materials and Live Animals (*nong chuk san mul*)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Local Presence (Article 7.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examination, cer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of agricultural raw materials and live animal products.

Sector:	Business Services – Services Incidental to Agriculture, Hunting, Forestry, and Fishing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Local Presence (Article 7.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services incidental to agriculture, forestry, and livestock, including genetic improvement, artificial insemination, rice and barley polishing, and activities related to a rice processing complex.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supply of services incidental to agriculture, hunting, forestry, and fishing by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the Forestry Cooperatives, and the Fisheries Cooperatives.

Sector:	Fishing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11.3)
Description: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fishing activities in Korea's territorial waters and Exclusive Economic Zone.

Sector:	Publishing of Newspaper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Local Presence (Article 7.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publishing (including printing and distribution) of newspapers.
Existing Measures: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Etc.* (Law No. 11690, March 23, 2013) *Enforcement Decree of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Etc.* (Presidential Decree No. 22151, May 4, 2010)

Sector:	Education Services – Pre-Primary, Primary, Secondary, Higher and Other Education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7.3 and 11.4)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Local Presence (Article 7.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pre-primary,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health and medicine-related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for prospective pre-primary, primary, and secondary teachers; professional graduate education in law; distance education at all education levels (except adult education services, provided that such services do not confer academic credit, diplomas or degrees); and other education services.

Sector:	Social Services – Human Health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7.3 and 11.4) Market Access (Article 7.4)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Local Presence (Article 7.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human health.
Existing Measures:	Legislation listed below, or replacement legislation, including its enforcement decrees, enforcement regulations, and other subsidiary regulations, is part of examples for transparency. This reservation includes any other matters with regard to human health not listed herein;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National Nutrition Management Act*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ct*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National Medical Centers* *Act on the Organization of the Korean National Red Cross*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Local Medical Centers*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Medical Service Act*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ct on the Transplant of Internal Organs, etc.* *Bioethics and Safety Act* *Act on Cord Blood Management and Research* *Blood Management Act* *Pharmaceutical Affairs Act*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Medical Technicians, etc. Act* *Mental Health Act* *Act o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Quarantine Act* *Tuberculosis Prevention Act* *Cancer Control Act* *Act on the Prevention of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ct on the Promotion of Korean Medicine and Pharmaceuticals*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 Quality Control Act*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Framework Act on Food Safety* *Food Sanitation Act* *Laboratory Animal Act*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Children's Dietary Life* *Medical Devices Act* *Safety, Management, etc. of Human Tissue Act*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Cosmetics Act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Sector: Health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Market Access (Article 7.4)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collection of blood and its components; the distribution of blood and blood products, including plasma derived products; plasma fractionation services; and the procurement of blood and blood products and services.

Existing Measures: *Act on the Organization of the Korean National Red Cross*
Blood Management Act
Pharmaceutical Affairs Act

Sector:	Recreational, Cultural, and Sporting Services – Motion Picture Promotion, Advertising or Post-Production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7.3 and 11.4)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Local Presence (Article 7.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motion picture promotion, advertising or post-production services.
Existing Measures:	*Act on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Law No. 11902, July 16, 2013)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Presidential Decree No. 24036, August 13, 2012)

Sector:	Recreational, Cultural, and Sporting Services – Museum and Other Cultural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Local Presence (Article 7.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conservation, reconstruc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heritage and properties, including the excavation, appraisal or dealing of cultural heritage and properties.
Existing Measures: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Law No.11228, January 26, 2012) *Enforcement Decree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Presidential Decree No. 23862, June 19, 2012) *Archeological Heritage Protection and Survey Act* (Law No. 10882, July 21, 2011)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rcheological Heritage Protection and Survey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o. 78, February 16, 2011) *Act on the Cultural Heritage Repair, Etc.* (Law No. 11530, December 11, 2012)

Sector: Other Recreational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11.3)

Description: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ourism in rural, fishery and agricultural sites.

Sector: Legal Services – Foreign Legal Consultant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Local Presence (Article 7.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1.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s[1]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restrictions on certification, approval, registration, admission, and supervision of, and any other requirements with respect to, any persons who have obtained qualification in a foreign country equivalent to that of *byeon-ho-sa* (Korean-licensed lawyers) or foreign law firms supplying any type of legal services in Korea[2];

(b) restrictions on any persons who have obtained qualification in a foreign country equivalent to that of *byeon-ho-sa* (Korean-licensed lawyers) or foreign law firms entering into partnerships, commercial associations, affiliations, or any other type of relationship regardless of legal form, with *byeon-ho-sa* (Korean-licensed lawyers), Korean law firms, *beop-mu-sa* (Korean-certified judicial scriveners), *byeon-ri-sa* (Korean-licensed patent attorneys), *gong-in-hoe-gye-sa* (Korean-certified public accountants), *se-mu-sa* (Korean-certified tax accountants), or *gwan-se-sa* (Korean customs brokers)[3];

(c) restrictions on any persons who have obtained qualification in a foreign country equivalent to that of *byeon-ho-sa* (Korean-licensed lawyers) or foreign law firms hiring *byeon-ho-sa* (Korean-licensed lawyers), *beop-mu-sa* (Korean-certified judicial scriveners), *byeon-ri-sa* (Korean-licensed patent attorneys), *gong-in-hoe-gye-sa* (Korean-certified public accountants), *se-mu-sa* (Korean-certified tax accountants), or *gwan-se-sa* (Korean customs brokers) in Korea[4]; and

(d) restrictions on senior management and the board of directors of legal entities supplying foreign legal consulting services, including with respect to the chairman.

---

[1] For greater certainty, commercial presence is required for temporary entry.

[2] For greater certainty, it also includes deciding on whether to permit the provision of such type of legal services in Korea.

[3] For greater certainty, it also includes deciding on whether to permit the entrance into such relationship in Korea.

[4] For greater certainty, it also includes deciding on whether to permit the establishment of such employment relationship in Korea.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no later than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Korea shall allow, subject to certain requirement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Australian law firms to establish representative offices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s or FLC offices) in Korea, and lawyers licensed in Australia to provide legal advisory services regarding the laws of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y are licensed and public international law as foreign legal consultants in Korea.

(b) no later than two years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Korea shall allow FLC offices, subject to certain requirement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to enter into specific cooperative agreements with Korean law firms in order to be able to jointly deal with cases where domestic and foreign legal issues are mixed, and to share profits derived from such cases.

(c) no later than five years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Korea shall allow Australian law firms to establish, subject to certain requirement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joint venture firms with Korean law firms. Korea may impose restrictions on the proportion of voting shares or equity interests of the joint venture firms. For greater certainty, such joint ventures may, subject to certain requirements, employ Korean-licensed lawyers as partners or associates.

3. Korea shall maintain, at a minimum, the measures adopted to implement its commitments in paragraph 2.

For the purposes of this entry, "Australian law firm" means a law firm organised under Australian law and headquartered in Australia.

Sector: Professional Services – Foreign Chartered Accountant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Local Presence (Article 7.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1.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restrictions on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or accounting corporations registered under foreign laws hiring *gong-in-hoe-gye-sa* (Korean-certified public accountants);

(b) restrictions on foreign-certified public accountants providing auditing services in Korea; and

(c) restrictions on senior management and the board of directors of legal entities supplying certified public accountancy services, including with respect to the chairman.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no later than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Korea shall allow, subject to certain requirement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i) Australian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registered in Australia or accounting corporations organised under Australian law to supply accounting consulting services relating to Australian or international accounting laws and standards through offices established in Korea; and

(ii) Australian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registered in Australia to work in *hoe-gye-beop-in* (Korean accounting corporations);

(b) no later than five years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Korea shall allow Australian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registered in Australia to invest in any *hoe-gye-beop-in* (Korean accounting corporations), subject to certain requirement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i) *gong-in-hoe-gye-sa* (Korean registered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shall own more than 50 percent of the voting shares or equity interest of the *hoe-gye-beop-in*, and

(ii) any single Australian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registered in Australia owns less than 10 percent

of the voting shares or equity interests of the *hoe-gye-beop-in*.

3. Korea shall maintain, at a minimum, the measures adopted to implement its commitments in paragraph 2.

For the purposes of this entry:

(a) an "Australian certified public accountant registered in Australia" means an Australian accounting with the qualification of Certified Practising Accountant or Chartered Accountant; and

(b) an "Australian accounting corporation" means an accounting corporate entity or partnership organised under Australian law and headquartered in Australia.

Sector: Professional Services – Foreign Certified Tax Accountant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Local Presence (Article 7.5)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1.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restrictions on certified tax accountants or tax agency corporations registered under foreign laws hiring *se-mu-sa* (Korean-certified tax accountants) or *gong-in-hoe-gye-sa* (Korean-certified public accountants);

(b) restrictions on foreign-certified tax accountants providing tax reconciliation services and tax representative services in Korea; and

(c) restrictions on senior management and the board of directors of legal entities supplying certified tax accountancy services, including with respect to the chairman.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no later than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Korea shall allow, subject to certain requirement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i) the establishment of offices in Korea by Australian certified tax accountants registered in Australia or tax agency corporations organised under Australian laws to provide tax consulting services with respect to Australian or international tax laws and taxation system; and

(ii) Australian certified tax accountants registered in Australia to work in *se-mu-beop-in* (Korean tax agency corporations).

(b) no later than five years after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Korea shall allow Australian certified tax accountants registered in Australia to invest in any *se-mu-beop-in* (Korean tax agency corporations), subject to certain requirement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i) *se-mu-sa* (Korean-certified tax accountants) shall own more than 50 percent of the voting shares or equity interests of the *se-mu-beop-in*; and

(ii) any single Australian certified tax accountant registered in Australia owns less than 10 percent

of the voting shares or equity interests of the *se-mu-beop-in*.

3. Korea shall maintain, at a minimum, the measures adopted to implement its commitments in paragraph 2.

For the purposes of this entry:

(a) an "Australian certified tax accountant registered in Australia" means an Australian tax accountant with the qualification of Certified Practising Accountant or Chartered Accountant; and

(b) an "Australian tax agency corporation" means a tax agency corporation or partnership organised under Australian law and headquartered in Australia.

Existing Measures: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Law No. 11610, January 1, 2013), Articles 6, 13, 16-3 and 20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824, November 5, 2013), Article 97

Guidelines Governing the Work of Tax Agents (Ord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No, 1761, August 24, 2009), Articles 20 and 22

Sector: Business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7.2)
Local Presence (Article 7.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exportation and re-exportation of controlled commodities, software and technology.

Only persons residing in Korea may apply for a license to export or re-export such commodities, software or technology.

Existing Measures:

Promotion of Atomic Energy Act (Law No. 11714, March 23, 2013)

Foreign Trade Act (Law No. 11873, June 7, 2013)

Notice on Exportation and Re-exportation of Controlled Commodities (Notic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No. 2013-39, May 31, 2013)

The Customs Act (Law No. 11602, January 1, 2013)

Sector: All Sector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11.3)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Description: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an investment to supply a service in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as that term is defined in Article 7.1.5, such as law enforcement and correctional services. This entry does not apply to:

(a) an investor or covered investment that has entered into an agreement with Korea with respect to the supply of such services; or

(b) a measure adopted or maintained by Korea to the extent that the measure is subject to Chapter 8 (Financial Services).

Sector: Transportation Services – Maritime Passenger Transportation and Maritime Cabotage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7.3 and 11.4)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Local Presence (Article 7.5)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passenger transportation services, maritime cabotage, and the operation of Korean vessels, including the following measures:

A person that supplies international maritime passenger transportation services must obtain a license from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which is subject to an economic needs test.

Without prejudice to the scope of activities which may be considered as cabotage under the relevant national legislation, maritime cabotage is reserved for Korean vessels, which are assumed to cover transportation of passengers or goods between a port or point located in the entire Korean peninsula and(or) any adjacent Korean islands and another port or point located in the entire Korean peninsula and(or) any adjacent Korean islands, including on its continental shelf as provided i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traffic originating and terminating in the same port or point located in the entire Korean peninsula and any adjacent Korean islands. "Korean vessel" means:

(a) a vessel owned by the Korean Government, a state enterprise, or a subsidiary institutions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b) a vessel owned by a Korean national;

(c) a vessel owned by an enterprise organised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or

(d) a vessel owned by an enterprise organised under foreign law that has its principal office in Korea and whose *dae-pyo-ja* (for example, a chief executive officer, president, or similar principal senior officer) is a Korean national. In the event there is more than one, all *dae-pyo-ja* must be Korean nationals.

For greater certainty, measures relating to the landside aspects of port activities are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Article 22.2 (Essential Security).

APPENDIX II-A

For the following Sectors, Korea's obligations under Article X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as set out in Korea's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under the GATS (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and GATS/SC/48/Suppl.3/Rev.1) are improved as described.

Sector/Sub-sector	Market Access Improvements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on natural sciences	Insert new commitments with "None" for modes 1 and 2, "Unbound" for mode 3 and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for mode 4.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on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Modify mode 1 and 2 limitations from "Unbound" to "None".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Insert new commitments with "None" for modes 1 and 2, "Unbound" for mode 3 and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for mode 4.
Market research and public opinion polling services	Modify mode 1 and 2 limitations from "Unbound" to "None".
Services incidental to mining	Modify mode 1 and 2 limitations from "Unbound" to "None".
Packaging services	Modify mode 1 and 2 limitations from "Unbound" to "None".
Convention services other than convention agency services	Insert new commitments with "None" for mode 1, 2 and 3 and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for mode 4.
Tourism and travel-related services	Insert new commitments with "Unbound*" for mode 1, "None" for mode 2 and 3 and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for mode 4.
Beverage serving services without entertainment	
Excluding rail and air transport-related facilities in beverage serving services without entertainment	
Tour operator services	Insert new commitments with "None" for mode 1, 2 and 3 and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for mode 4.

For the following Sectors, Korea's obligations under Article X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as set out in Korea's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under the GATS (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and GATS/SC/48/Suppl.3/Rev.1) are improved as described.

Sector/Sub-sector	Market Access Improvements
Tourist guide services	Modify mode 3 from "Only travel agencies are allowed to supply tourist guide services" to "None".

ANNEX II
SCHEDULE OF AUSTRALIA

Sector: All Sector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7.3 and 11.4)
Market Access (Article 7.4)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Local Presence (Article 7.5)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Australi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supply of a service by the presence of natural persons, or other movement of natural persons, including immigration, entry or temporary stay,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Chapter 10 (Movement of Natural Persons).

Existing Measures:

Sector: All Sector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Market Access (Article 7.4)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Local Presence (Article 7.5)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Australi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according preferences to any indigenous person or organisation or providing for the favourable treatment of any indigenous person or organisation in relation to acquisition, establishment or operation of any commercial or industrial undertaking in the service sector.

Australi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investment that accords preferences to any indigenous person or organisation or providing for the favourable treatment of any indigenous person or organisation.

For the purpose of this reservation, an indigenous person means a person of the Aboriginal race of Australia or a descendant of an indigenous inhabitant of the Torres Strait Islands.

Existing Measures: Legislation and ministerial statements at all levels of government including:

Australia's foreign investment policy
Native Title Act 1993 (Cth)
Aboriginal Land Rights (Northern Territory) Act 1976 (Cth)
Aboriginal Land Rights Act 1983 (NSW)
Native Title (New South Wales) Act 1994 (NSW)
Aboriginal Land Act 1991 (Qld)
Torres Strait Islander Land Act 1991 (Qld)
Native Title (South Australia) Act 1994 (SA)
Maralinga Tjarutja Land Rights Act 1984 (SA)
AnanguPitjantjatjaraYankunytjatjara Land Rights Act 1981 (SA)
AnanguPitjantjatjaraYankunytjatjara Land Rights Regulations 2010 (SA)
Pitjantjatjara Land Rights Regulations 2003 (SA)
The statutory bodies that administer the Anangu Pitjantjatjara Yankunytjatjara lands and the Maralinga Tjarutja lands
Mining Act 1971 (SA)
Opal Mining Act 1995 (SA)
Aboriginal Lands Act 1995 (Tas)
Traditional Owner Settlement Act 2010 (Vic)

Sector: Disadvantaged Group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11.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 11.4)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Description: Investment

Australi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that accords rights or preferences to socially or economically disadvantaged groups, such as the disabled, persons who have rendered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and minority groups.

Existing Measures:

Sector: All Sectors

Obligations Concerned: Market Access (Article 7.4)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ustrali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at the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that is not inconsistent with Australia's Revised Services Offer of 31 May 2005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Doha Development Agenda negotiations (WTO Document - TN/S/O/AUS/Rev.1).

Existing Measures:

Sector:	All Sector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11.3)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Description:	Investment Australi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proposals by foreign persons[1] and foreign government investors to invest in Australian urban land[2] (including interests that arise via leases, financing and profit sharing arrangements, and the acquisition of interests in urban land corporations and trusts), other than developed non-residential commercial real estate.
Existing Measures:	Australia's foreign investment policy, which includes the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 (Cth) (FATA);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Regulations 1989* (Cth); *Financial Sector (Shareholdings) Act 1998* (Cth) and Ministerial Statements. *Economic Development Act 2012* (Qld) *Sustainable Planning Act 2009* (Qld) *Integrated Resort Development Act 1997* (Qld) *Mixed Use Development Act 1992* (Qld) *Sanctuary Cove Resort Act 1995* (Qld) *Townsville City Council (Douglas Land Development) Act 1993* (Qld)

[1] The term "foreign person" has the meaning set out in the FATA.

[2] The term "Australian urban land" has the meaning set out in the FATA.

Sector:	All Sector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11.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 11.4)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Description:	Investment Australi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that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with respect to proposals by foreign persons[3] and foreign government investors to invest in Australia.
Existing Measures:	Australia's foreign investment policy, which includes the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 (Cth);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Regulations 1989* (Cth); *Financial Sector (Shareholdings) Act 1998* (Cth); and Ministerial Statements.

[3] The term "foreign person" has the meaning set out in the FATA.

Sector:	All Sector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11.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 11.4)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Senior Management and Board of Directors (Article 11.10)
Description:	Investment Australi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to allow the screening of proposals by foreign persons[4] to invest $A15 million or more in Australian agricultural land and $A53 million or more in Australian agribusinesses.
Existing Measures:	Australia's foreign investment policy, which includes the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 (FATA);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Regulations 1989* (Cth); *Financial Sector (Shareholdings) Act 1998* (Cth); and Ministerial Statements.

Sector:	All Sector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11.3) Market Access (Article 7.4)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Australi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a) the devolution to the private sector of services provided in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at the time that the Agreement comes into force; and (b) the privatisation of government-owned entities or assets.
Existing Measures:	

[4] The term "foreign person" has the meaning set out in the FATA.

Sector: All Sector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7.3 and 11.4)
Market Access (Article 7.4)
Local Presence (Article 7.5)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Australi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 of law enforcement and correctional services, and the following services to the extent that they are social services established or maintained for a public purpose:

(a) income security or insurance;
(b) social security or insurance;
(c) social welfare;
(d) public education;
(e) public training;
(f) public utilities;
(g) public transport;
(h) public housing;
(i) health and
(j) child care.

Existing Measures:

Sector: Broadcasting and Audiovisual Services[5]
Advertising Services
Live Performance[6]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7] (Articles 7.3 and 11.4)
Market Access (Article 7.4)
Local Presence (Article 7.5)[8]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Australi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a) transmission quotas for local content on free-to-air commercial television broadcasting services;
(b) non-discriminatory expenditure requirements for Australian production on subscription television broadcasting services;
(c) transmission quotas for local content on free-to-air radio broadcasting services;
(d) other audio-visual services transmitted electronically, in order to make Australian audio-visual content reasonably available to Australian consumers[9];
(e) spectrum management and licensing of broadcasting services[10]; and
(f) subsidies or grants for investment in Australian cultural activity.

This entry does not apply to foreign investment restrictions in the broadcasting and audiovisual services sector.

Existing Measures:
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Cth)
Radiocommunications Act 1992 (Cth)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Cth)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Cth)
Screen Australia Act 2008 (Cth)
Broadcasting Services (Australian Content) Standard 2005

[5] For greater certainty, Australi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measures under subparagraphs (a)-(f) with respect to the services supplied by the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and the Special Broadcasting Service Corporation.

[6] Applies only in respect of subparagraph (f).

[7] Applies only to the treatment as local content of New Zealand programs or productions.

[8] Applies only in respect of subparagraph (e) and in respect of the licensing of services covered by subparagraph (d).

[9] Any such measure will be implemented in a manner that is consistent with Australia's commitments under Article XVI and Article X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10] In respect of subparagraph (e), Australia's reservation applies only in respect of the Market Access and Local Presence obligations.

Children's Television Standards 2009
Television Program Standard 23 – Australian Content in Advertising
Commercial Radio Codes of Practice and Guidelines
Community Broadcasting Codes of Practice

Sector: Broadcasting and Audiovisual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7.3 and 11.4)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Australi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under the International Co-production Program, preferential co-production arrangements for audiovisual productions. Official co-production status, which may be granted to a co-production produced under these co-production arrangements, confers national treatment on works covered by these arrangements.

Existing Measures: International Co-production Program

Sector:	Recreational, Cultural and Sporting Services[11]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7.3 and 11.4) Market Access (Article 7.4) Local Presence (Article 7.5)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Australi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creative arts[12], cultural heritage[13] and other cultural industries, including libraries, archives, museums and other cultural services.
Existing Measures:	

[11] For greater certainty, this reservation does not apply to Audiovisual Services.

[12] "Creative arts" include: the performing arts and other entertainment services – including live theatre, dance and music – visual arts and craft, literature, indigenous traditional practice and contemporary cultural expression, and hybrid arts work which uses new technologies to transcend discrete artform divisions.

[13] "Cultural heritage" includes: ethnological, archaeological, historical, literary, artistic, scientific or technological moveable or built heritage, including the collections which are documented, preserved and exhibited by museums, galleries, libraries, archives and other heritage collecting institutions.

Sector:	Education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7.3 and 11.4) Market Access (Article 7.4) Local Presence (Article 7.5)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Australi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primary and public education.
Existing Measures:	

Sector:	Education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Local Presence (Article 7.5) National Treatment (Article 11.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 11.4)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Australi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supply of educational services through commercial presence.
Existing Measures:	

Sector:	Distribution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Market Access (Article 7.4)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ustrali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wholesale and retail trade services of tobacco products, alcoholic beverages or firearms.
Existing Measures:	

Sector:	Gambling and Betting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Market Access (Article 7.4) Local Presence (Article 7.5)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Australi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gambling and betting.
Existing Measures:	Legislation and ministerial statements including: *Interactive Gambling Act 2001*(Cth) *Gambling and Racing Control Act 1999* (ACT) *Unlawful Gambling Act 2009* (ACT) *Race & Sports Bookmaking Act 2001* (ACT) *Betting (ACTTAB Limited) Act 1964* (ACT) *Racing Act 1999* (ACT) *Casino Control Act 2006* (ACT) *Gaming Machine Act 2004* (ACT) *Interactive Gambling Act 1998* (ACT) *Lotteries Act 1964* (ACT) *Pool Betting Act 1964* (ACT) *Casino Control Act 1992* (NSW) *Gaming Machines Act 2001* (NSW) *Public Lotteries Act 1996* (NSW) *Lotteries and Art Unions Act 1901* (NSW) *Racing Administration Act 1998* (NSW) *Greyhound Racing Act 2009* (NSW) *Harness Racing Act 2009* (NSW) *Thoroughbred Racing Act 1996* (NSW) *Totalizator Act 1987* (NSW) *Unlawful Gambling Act 1998* (NSW) *Gambling Control Act* (NT) *Gaming Machine Act* (NT) *Racing and Betting Act* (NT) *Totaliser Licensing and Regulation Act* (NT) *Soccer Football Pools Act* (NT) *TAB Queensland Limited Privatisation Act 1999* (Qld) *Casino Control Act 1982* (Qld) *Jupiters Casino Agreement Act 1983* (Qld) *Brisbane Casino Agreement Act 1992* (Qld) *Breakwater Island Casino Agreement Act 1984* (Qld) *Lotteries Act 1997* (Qld) *Cairns Casino Agreement Act 1993* (Qld) *Charitable and Non-Profit Gaming Act 1999* (Qld) *Keno Act 1996* (Qld) *Wagering Act 1998* (Qld) *Gaming Machine Act 1991* (Qld) *Racing Act 2002* (Qld) *Casino Act 1997* (SA) *Lottery and Gaming Act 1936* (SA) *Independent Gambling Authority Act 1995*(SA) *Gaming Machines Act 1992* (SA) *State Lotteries Act 1966* (SA) *Racing (Proprietary Business Licensing) Act 2000* (SA) *Authorised Betting Operations Act 2000* (SA) *TAB (Disposal) Act 2000* (SA) *Gaming Control Act 1993* (Tas) *TT-Line Gaming Act 1993* (Tas) *Gambling Regulation Act 2003* (Vic) *Racing Act 1958* (Vic) *Casino Control Act 1991* (Vic) *Casino Management Act 1993* (Vic) *Casino (Burswood Island) Agreement Act 1985* (WA) *Racing and Wagering Western Australia Act 2003* (WA) *Gaming and Wagering Commission Act 1987* (WA) *Betting Control Act 1954* (WA) *Casino Control Act 1984* (WA) *Lotteries Commission Act 1990* (WA)

Sector: Social Services – Human Health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11.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 11.4)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Description: Investment

Australi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human health.

Existing Measures: Legislation listed below, or replacement legislation, including measures enacted under the Australian Constitution for the provision of pharmaceutical, sickness and hospital benefits, medical and dental services (Section 51(xxiiiA.)):

Australian Hearing Services Act 1991 (Cth), subsections 8(4) to 8(8) inclusive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ct 1987 (Cth)
Australian National Preventive Health Agency Act 2010 (Cth)
Australian Organ and Tissue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Authority Act 2008 (Cth)
Australian Radiation Protection and Nuclear Safety Act 1998 (Cth)
Australian Radiation Protection and Nuclear Safety (Licence Charges) Act 1998 (Cth)
Australian Sports Anti-Doping Authority Act 2006 (Cth)
Australian Sports Anti-Doping Authority (Consequential and Transitional Provisions) Act 2006 (Cth)
Australian Sports Commission Act 1989 (Cth)
Cancer Australia Act 2006 (Cth)
Commonwealth Serum Laboratories Act 1961 (Cth)
Dental Benefits Act 2008 (Cth)
Epidemiological Studies (Confidentiality) Act 1981 (Cth)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Act 1991 (Cth)
Gene Technology Act 2000 (Cth)
Gene Technology (Licence Charges) Act 2000 (Cth)
Health and Other Services (Compensation) Act 1995 (Cth)
Health and Other Services (Compensation) Care Charges Act 1995 (Cth)
Health Insurance Act 1973 (Cth)
Health Insurance Amendment (Extended Medicare Safety Net) Act 2012 (Cth)
Health Insurance Amendment (Professional Services Review) Act 2012 (Cth)
Health Insurance (Approved Pathology Specimen Collection Centres) Tax Act 2000 (Cth)
Health Insurance Commission (Reform and Separation of Functions) Act 1997 (Cth)
Health Insurance (Pathology) (Fees) Act 1991 (Cth)
Health Workforce Australia Act 2009 (Cth)
Healthcare Identifiers Act 2010 (Cth)
Hearing Services Administration Act 1997 (Cth)
Hearing Services and AGHS Reform Act 1997 (Cth)
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and Assessment) Act 1989 (Cth)
Industrial Chemicals (Registration Charge - Customs) Act 1997 (Cth)
Industrial Chemicals (Registration Charge - Excise) Act 1997 (Cth)
Industrial Chemicals (Registration Charge - General) Act 1997
Medical Indemnity Act 2002 (Cth)
Medical Indemnity (Competitive Advantage Payment) Act 2005 (Cth)
Medical Indemnity (Prudential Supervision and Product Standards) Act 2003 (Cth), Part 3, Division 2A
Medical Indemnity (Run-off Cover Support Payment) Act 2004 (Cth)
Medical Indemnity (UMP Support Payment) Act 2002 (Cth)
Medical Indemnity Agreement (Financial Assistance – Binding Commonwealth Obligations) Act 2002 (Cth)
Midwife Professional Indemnity (Commonwealth Contribution) Scheme Act 2010 (Cth)
Midwife Professional Indemnity (Run-off Cover Support Payment) Act 2010 (Cth)
Narcotic Drugs Act 1967 (Cth), sections 9, 10, 11, 13, 19 and 23 and subsection 24(1), and so much of the remaining provisions of the Act (other than sections 12 and 22 and subsection 24(2)) as relates to powers and functions under those sections
National Blood Authority Act 2003 (Cth)
National Health Act 1953 (Cth)
National Health Amendment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Act 2012 (Cth)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Act 1992 (Cth)
National Health Reform Act 2011 (Cth)
National Health Security Act 2007 (Cth)
Personally Controlled Electronic Health Records Act 2012 (Cth)
Private Health Insurance Act 2007 (Cth)
Private Health Insurance (Collapsed Insurer Levy) Act 2003 (Cth)
Private Health Insurance (Complaints Levy) Act 1995 (Cth)
Private Health Insurance (Council Administration Levy) Act 2003 (Cth)
Private Health Insurance (National Joint Replacement Register Levy) Act 2009 (Cth)
Private Health Insurance (Prostheses Application and Listing Fees) Act 2007 (Cth)
Private Health Insurance (Risk Equalisation Levy) Act 2003 (Cth)
Private Health Insurance (Transitional Provisions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Act 2007 (Cth)
Prohibition of Human Cloning for Reproduction Act 2002 (Cth)
Research Involving Human Embryos Act 2002 (Cth)
Quarantine Act 1908 (Cth), in relation to human quarantine
Quarantine (Validation of Fees) Act 1985 (Cth), in relation to human quarantine
Tobacco Plain Packaging Act 2011 (Cth)
Therapeutic Goods Act 1989 (Cth)
Therapeutic Goods (Charges) Act 1989 (Cth)
Tobacco Advertising Prohibition Act 1992 (Cth)
World Health Organization Act 1947 (Cth)
Human Services (Medicare) Act 1973 (Cth)
Australian Participants in British Nuclear Tests (Treatment) Act

2006 (Cth)
Veterans' Entitlements Act 1986 (Cth)
Military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Act 2004 (Cth)

Sector:	Health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7.2 and Article 11.3)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Australi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collection of blood and its components; the distribution of blood and blood products, including plasma derived products; plasma fractionation services; and the procurement of blood and blood products and services.
Existing Measures:	Australia's policy on blood self-sufficiency, which includes the National Blood Agreement 2003, *Commonwealth Serum Laboratories Act 1961* (Cth) and the *National Blood Authority Act 2003* (Cth).

Sector:	Maritime Transport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s 7.2 and 11.3) Market Access (Article 7.4) Local Presence (Article 7.5)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9)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Australi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maritime cabotage services and offshore transport services[14].
Existing Measures:	*Customs Act 1901* (Cth) *Workplace Relations Act 1996* (Cth) *Seafarers'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Act 1992* (Cth)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ritime Industry) Act 1993* (Cth) *Shipping Registration Act 1981* (Cth)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Cth) *Coastal Trading (Revitalising Australian Shipping Act 2012* (Cth) *Coastal Trading (Revitalising Australian Shipping) (Consequential Amendments and Transitional Provisions) Act 2012* (Cth) *Shipping Reform (Tax Incentive) Act 2012* (Cth)

[14] For the purposes of this reservation, "cabotage" is defined as the transportation of passengers or goods between a port located in Australia and another port located in Australia and traffic originating and terminating in the same port located in Australia. "Offshore transport" refers to shipping services involving the transportation of passengers or goods between a port located in Australia and any location associated with or incidental to the exploration or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of the continental shelf of Australia, the seabed of the Australian coastal sea and the subsoil of that seabed.

Sector:	Maritime Transport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11.3)
Description:	Investment Australi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the registration of vessels in Australia.
Existing Measures:	

Sector:	Transport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11.3)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1.10)
Description:	Investment Australi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investment in federal leased airports.
Existing Measures:	*Airports Act 1996* (Cth) *Airports (Ownership-Interests in Shares) Regulations 1996* (Cth) *Airports Regulations 1997* (Cth)

Sector:	All Sectors
Obligations Concerned: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s 7.3 and 11.4)
Descrip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Australi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that accords more favourable treatment to the service suppliers or investors of non-Parties under any bilateral or multilateral international agreement in force or signed prior to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15]. Australi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that accords more favourable treatment to the service suppliers or investors of non-Parties under any bilateral or multilateral international agreement in force or signed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involving: (a) aviation; (b) fisheries; or (c) maritime matters, including salvage.
Existing Measures:	

[15] For the avoidance of doubt, this includes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under any existing or future protocol to the *Australia 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ANZCERTA).

ANNEX III
SCHEDULE OF KOREA WITH RESPECT TO FINANCIAL SERVICES

Introductory Note for the Schedule of Korea

1. The Schedule of Korea to this Annex sets out:

(a) headnotes that limit or clarify the commitments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obligations described in subparagraph (b)(i) through (v) and in subparagraph (c);

(b) in Section A, pursuant to Article 8.9.1 (Non-Conforming Measures), the existing measures of Korea that do not conform with some or all of the obligations imposed by:

(i) Article 8.2 (National Treatment);

(ii) Article 8.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iii) Article 8.4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iv) Article 8.5 (Cross-Border Trade); or

(v) Article 8.8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nd

(c) in Section B, pursuant to Article 8.9.2 (Non-Conforming Measures), the specific sectors, sub-sectors, or activities for which Korea may maintain existing, or adopt new or more restrictive, measures that do not conform with the obligations imposed by:

(i) Article 8.2 (National Treatment);

(ii) Article 8.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iii) Article 8.4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iv) Article 8.5 (Cross-Border Trade); or

(v) Article 8.8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2. Each entry in Section A sets out the following elements:

(a) **Sector** refers to the general sector for which the entry is made;

(b) **Sub-sector** refers to the specific sector for which the entry is made;

(c) **Obligations Concerned** specifies the article(s) referred to in paragraph 1(b) that, pursuant to Article 8.9.1(a), do not apply to the non-conforming aspects of the law, regulation, or other measure, as set out in paragraph 4;

(d) **Level of Government** indicates the level of government maintaining the scheduled measure(s);

(e) **Measures** identifies the laws,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for which the entry is made. A measure cited in the **Measures** element:

(i) means the measure as amended, continued or renewed a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ii) includes any subordinate measure adopted or maintained under the authority of and consistent with the measure; and

(f) **Description** provides a general, non-binding description of the measure for which the entry is made.

3. Each entry in Section B sets out the following elements:

(a) **Sector** refers to the general sector for which the entry is made;

(b) **Sub-sector** refers to the specific sector for which the entry is made;

(c) **Obligations Concerned** specifies the article(s) referred to in paragraph 1(c) that, pursuant to Article 8.9.2, do not apply to the sectors, sub-sectors, or activities scheduled in the entry;

(d) **Level of Government** indicates the level of government maintaining the listed measure(s); and

(e) **Description** sets out the scope of the sectors, sub-sectors, or activities covered by the entry.

4. For entries in Section A, in accordance with Article 8.9.1(a), and subject to Article 8.9.1(c), the articles of this Agreement specified in the **Obligations Concerned** element of an entry do not apply to the non-conforming aspects of the law, regulation, or other measure identified in the **Measures** element of that entry, except to the extent that such non-conforming aspects are inconsistent with a Specific Commitment in Annex 8-B.

5. For entries in Section B, in accordance with Article 8.9.2, the articles of this Agreement specified in the **Obligations Concerned** element of an entry do not apply to the sectors, sub-sectors, and activities identified in the **Description** element of that entry.

6. Where Korea maintains a measure that requires that a service supplier be a citizen, permanent resident, or resident of its territory as a condition to the supply of a service in its territory, a Schedule entry for that measure taken with respect to Article 8.2, 8.3, 8.4, or 8.5 shall operate as a Schedule entry with respect to Article 11.3 (National Treatment), 11.4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or 11.9 (Performance Requirements) to the extent of that measure.

7. Certain measures that the Parties consider to be not inconsistent with Article 8.2 or 8.4 or subject to Article 8.10.1 are listed below.

8. An entry in Annex I or Annex II specifying that Article 7.2 (National Treatment) does not apply to the non-conforming aspects of a law, regulation, or other measure, shall not be construed as limiting a Party's obligation under Article 8.5.1 to accord national treatment with respect to the supply of services specified in Annex 8-A to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Certain Measures Not Inconsistent With Article 8.2 or 8.4 or Subject to Article 8.10.1

1. The following measures are not inconsistent with Article 8.4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Any revision, amendment or modification of the following measures or related laws will not be construed to be inconsistent with Article 8.4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conflict with the spirit of the original measure:

(a) an insurance company constituted in Korea may engage only in activities permitted by the relevant laws. (*Insurance Business Act* (Law No. 10394, July 23, 2010) Articles 10 and 11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Presidential Decree No. 22637, January 24, 2011), Articles 15 and 16);

(b) residents of Korea are not permitted to settle payment in KRW (Korean won) for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s supplied to them by residents of foreign countries.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Regulation*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No. 2009-18, September 30, 2009), Articles 5-11 and 7-8 to 7-10);

(c) banks and mutual savings banks in Korea are required to extend loans to small- or medium-sized companies. (*Bank of Korea's Regulations on Credit Extension* (Monetary Policy Committee, August 19, 1999), Article 2; *Mutual Savings Bank Act* (Law No. 8143, December 30, 2006), Article 11;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Mutual Savings Bank Act* (Presidential Decree No.19464, May 3, 2006), Article 8-2);

(d) the overall net open position of foreign exchange banks, measured by the sum of the net short position or the sum of the net long positions, whichever is greater (short-hand method), is limited to 50 percent of the total equity capital at the end of the previous month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Law No. 9351, January 30, 2009), Article 11-2; and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Regulation*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No. 2009-18, September 30, 2009), Article 2-9);

(e) securities credit extensions are subject to restrictions on the maximum credit amount and use of proceeds. An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is only permitted to extend credit for purpose related to the sale and purchase of securities.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Law No. 9407, February 3, 2009), Article 72;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Presidential Decree No. 21291, February 3, 2009), Article 69);

(f) the value of lending to an individual credit card holder may be capped. (*Specialized Credit Financing Business Act* (Law No. 7929, April 28, 2006) Article 24);

(g) a bank,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or other financial institution constituted in Korea may only engage in activities permitted by the relevant laws. (*Banking Act* (Law No. 7428, March 31, 2005), Articles 27 and 28;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Law No. 9407, February 3, 2009), Articles 40 and 41;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Presidential Decree No. 21291, February 3, 2009), Articles 43 and 44);

(h) a financial institution is prohibited from acquiring real estate for non-business purpose. (*Banking Act* (Law No. 7428, March 31, 2005), Article 38; and *Insurance Business Act* (Law No. 8902, March 14, 2008), Article 105;

(i) non-residents of Korea may convert foreign currency into KRW (Korean won) only for actual use in Korea.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Regulations*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No. 2009-18, September 30, 2009), Articles 7-8 to 7-10 and Articles 7-36 to 7-39); and

(j) Korea may restrict deposit interest rates, loan interest rates, other interest rates, maturity of deposit and related fees. (*Banking Act* (Law No. 7428, March 31, 2005), Article 30; *Regulation on Financial Institutions' Loans and Deposit Rates* (Monetary Policy Committee, December 24, 2003); *Lending Business Act* (Law No. 7523, May 31, 2005), Article 8 and Article 15; *Enforcement Decree of Lending Business Act* (Presidential Decree No. 19019, August 31, 2005), and Article 5 and Article 9).

2. The following measures fall within Article 8.10.1 (Exceptions) and, therefore, Article 8.2 (National Treatment) does not prevent Korea from maintaining them. Any revision, amendment or modification of the following measures or related laws will also fall within the ambit of Article 8.10.1:

(a) the operating fund of a branch of a foreign insurance company will be considered as capital and the head office's capital will no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purposes of determining the amount of funds to be raised or loans to be extended by such local branch (*Insurance Business Act* (Law No. 8902, March 14, 2008), Article 9-3);

(b) a branch in Korea of a foreign insurance company must maintain in the territory of Korea assets equal to the aggregate of the reserve for performance of liability and the reserve for emergency relating to the insurance contracts executed in Korea (*Insurance Business Act* (Law No. 8902, March 14, 2008), Article 75).

Headnotes

1. Commitments in these sub-sectors under the Agreement are undertaken subject to the limitations and conditions set forth in these headnotes and in the Schedules below.

2. To clarify the commitment of Korea with respect to Article 8.4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juridical persons supplying financial services and constituted under the laws of Korea are subject to non-discriminatory limitations on juridical form[1].

3. The commitments of Korea under Articles 8.2 (National Treatment) and 8.4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are subject to the limitation that in order to establish or acquire a controlling interest in a financial institution in Korea, a foreign investor must own or control a financial institution that engages in supplying financial services within the same financial services sub-sector in its home country.

4. Korea limits its commitments under Article 8.9.1(c) with respect to Article 8.4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following manner: Article 8.9.1(c) shall apply only to non-conforming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8.4(a) and not to those non-conforming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8.4(b).

[1] For example, partnerships and sole proprietorship are generally not acceptable juridical forms for depository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This headnote is not itself intended to affect, or otherwise limit, a choice by a financial institution of the other Party between branches or subsidiaries.

Section A

Sector:	Financial Services
Sub-Sector:	Insurance
Obligations Concerned: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Article 8.4)
Level of Government:	Central
Measures:	*Insurance Business Act* (Law No. 7971, August 29, 2006), Article 91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Presidential Decree No. 19493, May 30, 2006), Article 40
Description:	Only two employees of a commercial bank, mutual saving bank, or an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may sell insurance products at any one time at a single location. For transparency purposes, Korea notes that it restricts the manner of sales of insurance products such as the number of windows in a single bank location devoted to the sale of insurance, and limitations on the percentage of insurance sold by a bank that may be underwritten by a single insurer.

Sector:	Financial Services
Sub-Sector:	Insurance
Obligations Concerned:	Cross-Border Trade (Article 8.5)
Level of Government:	Central
Measures: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ssurance Act* (Law No. 7100, January 20, 2004) *Act on the Indemnification for Fire-Caused Loss and the Purchase of Insurance Policies* (Law No. 7186, March 11, 2004)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Law No. 7504, May 26, 2005) *Safety Control and Business Regulation of Liquefied Petroleum Gas Act* (Law No. 7428, March 31, 2005) *Urban Gas Business Act* (Law No. 7505, May 26, 2005) *Seafarers Act* (Law No. 8041, October 4, 2006)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Law No. 7913, March 24, 2006) *Excursion Ship and Ferry Business Act* (Law No. 7985, September 22, 2006) *Manufacture and Management of Elevators Act* (Law No. 7279, December 31, 2004)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Safety Act* (Law No. 8016, September 27, 2006) *Juvenile Activity Promotion Act* (Law No. 8014, September 27, 2006)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Guarantee Act* (Law No. 7002, December 11, 2003) *Air Transport Business Promotion Act* (Law No. 6621, January 19, 2002) *Road Traffic Act* (Law No. 7969, July 19, 2006)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Law No. 8050, October 4, 2006) *Protection of Wild Fauna and Flora Act* (Law No. 8045, October 4, 2006)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Law No. 8138, December 30, 2006)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Law No. 7796, December 29, 2005)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Law No. 7305, December 31, 2004)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ct* (Law No. 7188, March 11, 2004) *Goods Distribution Promotion Act* (Law No. 8014, September 27, 2006) *Social Welfare Services Act* (Law No. 7918, March 24, 2006) *Fishing Boats for Anglers Act* (Law No. 7642, July 29, 2005) *Electronic Finance Transaction Act* (Law No. 7929, April 28, 2006) *Digital Signature Act* (Law No. 7813, December 30, 2005) *Attorney-at-Law Act* (Law No. 7894, March 24, 2006) *Laboratory Safety Environment Act* (Law No. 7425, March 31, 2005)
Description:	In determining whether a natural person resident in Korea or juridical persons established in Korea has satisfied a legal obligation to purchase "compulsory" insurance services not listed in Annex 8-A, any such service supplied in the territory of a foreign country to such person is not considered. However services supplied outside the territory of Korea may be considered in satisfaction of the legal obligation if the required insurance cannot be purchased from an insurer established in Korea.

Sector:	Financial Services
Sub-Sector: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8.2)
Level of Government:	Central
Measures:	*Banking Act* (Law No. 7428, March 31, 2005), Articles 15 and 16-2 *Enforcement Decree of the Banking Act* (Presidential Decree No. 19422, March 29, 2006), Article 5 and Annex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Law No. 7529, May 31, 2005), Articles 8 and 8-2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Presidential Decree No. 19422, March 29, 2006), Article 6-3
Description:	1. A financial institution constituted under the laws of another country may own more than 10 percent of the shares of a commercial bank or bank holding company constituted under the laws of Korea only if that institution is an "internationally recognised financial institution.[2]" 2. For the purposes of transparency: (a)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pplies additional criteria for approval that are not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to approval of ownership by an internationally recognised financial institution as described in paragraph 1. (b) a natural person may not own more than 10 percent of the shares of a commercial bank or bank holding company constituted under the laws of Korea. (c) a corporate entity other than a financial institution, the main business of which is not financial services, may not own more than four percent of the shares of a commercial bank or bank holding company constitute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ownership percentage can be increased to 10 percent if the corporate entity waives its ability to exercise voting rights relating to the shares in excess of four percent.

[2] An "internationally recognised financial institution" includes any financial institution that has been rated by an international rating organisation at a level acceptable to the relevant Korean regulator or a financial institution that has demonstrated by alternative means acceptable to the relevant Korean regulator that it has an equivalent status.

Sector:	Financial Services
Sub-Sector: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8.2)
Level of Government:	Central
Measures:	*Banking Act* (Law No. 7428, March 31, 2005), Article 58 *Guideline on Grant of Banking Business Approval* (July 23, 2004), Paragraph 17-B *Regulation on Supervision of Banking Business* (Financial Supervisory Committee Notification No. 2006-87, December 28, 2006), Article 10
Description:	Each branch location in Korea of a bank constituted under the laws of another country requires a separate license. Each branch located in Korea of a bank constituted under the laws of another country requires a separate license. A branch of a banking subsidiary, including one owned or controlled by investors of another country, does not require such a license.

Sector:	Financial Services
Sub-Sector: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Obligations Concerned: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Article 8.4)
Level of Government:	Central
Measures: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Law No. 9407, February 3, 2009), Articles 373, 375, 379 and 386
Description:	Only the Korea Exchange may operate a securities or derivatives market in Korea.

Sector:	Financial Services
Sub-Sector: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Obligations Concerned: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Article 8.4)
Level of Government:	Central
Measures: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Law No. 9407, February 3, 2009), Articles 294 through 323 and 166
Description:	Only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may serve as the depository for listed and unlisted securities issued in Korea or as the intermediary for transfer of those securities between accounts of depositors in Korea.

Sector:	Financial Services
Sub-Sector: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Obligations Concerned: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Article 8.4)
Level of Government:	Central
Measures: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Law No. 9407, February 3, 2009), Articles 298, 378 and 166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Presidential Decree No. 21291, February 3, 2009), Article 178
Description:	Only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and the Korea Exchange may perform liquidation and settlement of securities and derivatives listed or traded on the Korea Exchange.

Sector:	Financial Services
Sub-Sector: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Obligations Concerned:	Cross-Border Trade (Article 8.5)
Level of Government:	Central
Measures: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Law No. 9407, February 3, 2009), Article 166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Presidential Decree No. 21291, February 3, 2009), Article 184
Description:	A non-professional investor (including some professional investors[3]) shall make transactions through an investment broker licensed in Korea when he/she intends to trade securities 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ies and exchange-traded derivatives on foreign securities markets or foreign derivatives markets.

[3] Institutional investors pursuant to Article 1-2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Regulation*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No. 2009-2, February 3, 2009) are excluded.

Sector:	Financial Services
Sub-Sector: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8.2)
Level of Government:	Central
Measures:	*Banking Act* (Law No. 7428, March 31, 2005), Articles 62 and 63 *Enforcement Decree of the Banking Act* (Presidential Decree No. 19422, March 29, 2006), Articles 25 and 26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Law No. 9407, February 3, 2009), Article 65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Presidential Decree No. 21291, February 3, 2009), Article 65
Description:	A branch in Korea of a bank or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constituted under the laws of another country must bring and maintain operating funds within Korea, which shall be used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the amount of funds to be raised or loans to be extended by such local branch. For the purposes of the *Banking Act* and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such a branch is considered a separate legal entity from the bank or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constituted under the laws of another country.

Sector:	Financial Services
Sub-Sector: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Obligations Concerned: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Article 8.4)
Level of Government:	Central
Measures:	*Credit Unions Act* (Law No. 8145, December 30, 2006), Article 7 *Mutual Savings Bank Act* (Law No. 8143, December 30, 2006), Article 6 *Specialized Credit Financing Business Act* (Law No. 7929, April 28, 2006), Article 5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Law No. 9407, February 3, 2009), Article 355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Law No. 7883, March 24, 2006), Article 5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Law No. 8050, October 4, 2006), Article 9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Law No. 9407, February 3, 2009), Articles 254, 258 and 263
Description:	The following types of business may not be conducted by a branch of a financial institution constituted under the laws of another country: (a) credit unions; (b) mutual savings banks; (c) specialised capital finance companies; (d) foreign and won currency capital brokerage firms; (e) credit information companies; (f) general fund administration firms; (g)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appraisal companies; and (h) bond appraisal companies.

Sector:	Financial Services
Sub-Sector: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Obligations Concerned: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Article 8.4)
Level of Government:	Central
Measures:	*Electronic Finance Transaction Act* (Law No. 7929, April 28, 2006), Article 30
Description:	A non-financial institution that seeks to offer certain electronic financial services in Korea may establish only as a subsidiary.

Sector:	Financial Services
Sub-Sector: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8.2)
Level of Government:	Central
Measures:	*Korea Development Bank Act* (Law No. 9703, May 21, 2009) *Korea Finance Corporation Act* (Law No. 9741, May 27, 2009) *Industrial Bank of Korea Act* (Law No. 9460, February 6, 2009)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Law No. 7882, March 24, 2006)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Act* (Law No. 7638, July 29, 2005)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Act* (Law No. 7611, July 21, 2005)
Description:	Korea may grant: (a) to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financial institutions[4] (collectively, Government-sponsored Institutions or GSIs): (i) the Korea Development Bank; (ii) the Industrial Bank of Korea; (iii)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iv)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and (v)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b) special treat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i) guarantees of loans to or bonds issued by the GSIs; (ii) permission to issue more bonds per capital than similarly-situated non-GSIs; (iii) reimbursement of losses incurred by GSIs; or (iv) exemption from public assets and certain taxes on capital, surplus, profit, or assets.

[4] These five Government-sponsored Institutions shall not be considered state-enterprises/state-owned enterprises for the purposes of Article 4 (Competitive Neutrality) of Chapter 14 (Competition Policy).

Sector:	Financial Services
Sub-Sector: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Obligations Concerned: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8)
Level of Government:	Central
Measures: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Law No. 7882, March 24, 2006), Article 16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Act* (Law No. 7638, July 29, 2005), Article 49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Act* (Law No. 7611, July 21, 2005), Article 51
Description:	Chief and deputy executive officers and all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and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must be Korean nationals.

Sector:	Financial Services
Sub-Sector: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8.2)
Level of Government:	Central
Measures:	*Housing Act* (Law No. 8050, October 4, 2006), Article 75 *Rules on Provision of Housing*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 No. 168, September 28, 2009); paragraph 2 of Article 5
Description:	Korea may limit the number of financial institutions designated to hold housing accounts, such as the National Housing Subscription Deposit Accounts.

Sector:	Financial Services
Sub-Sector: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Obligations Concerned: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Article 8.4)
Level of Government:	Central
Measures: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Law No. 8050, October 4, 2006), Article 9
Description:	Interbank Brokerage of KRW (Korean won) spot transactions is limited to the two existing brokerage companies in the business.

Section B

Sector:	Financial Services
Sub-Sector:	Insurance
Obligations Concerned:	Cross-Border Trade (Article 8.5)
Level of Government:	Central
Measures:	None
Description:	Korea reserves the right not to consider any "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 service supplied in the territory of a foreign country to a natural person in Korea or juridical person established therein, in determining whether such natural or juridical person has satisfied a legal obligation to purchase such "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 service not listed in Annex 8-A. However, services supplied outside the territory of Korea may be considered in satisfaction of the legal obligation if the required insurance cannot be purchased from an insurer established in Korea.

Sector:	Financial Services
Sub-Sector: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8.2)
Level of Government:	Central
Measures:	None
Description:	In the context of privatising government-owned or government-controlled entities that supply financial services,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relating to the continued guarantee, or time-limited additional guarantee, of the obligations and liabilities of these entities.

Sector:	Financial Services
Sub-Sector: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excluding insurance)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8.2)
Level of Government:	Central
Measures: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Law No. 9407, February 3, 2009)
Description:	Korea reserves the right to limit ownership by foreign investors of the Korea Exchange and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In the event of public offering of shares of the Korea Exchange or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Korea reserves the right to limit shareholding by foreign persons in the relevant institution, provided that Korea shall ensure that: (a) any shareholding interests held by foreign persons at the time of the public offering shall be preserved; and (b) following the public offering, the Exchange or Depository shall assure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of Australia.

ANNEX III
SCHEDULE OF AUSTRALIA

Introductory Note for the Schedule of Australia

1. The Schedule of Australia to Annex III sets out:

(a) headnotes that limit or clarify the commitments of Australia with respect to the obligations described in subparagraphs (b) and (c);

(b) in Section A, pursuant to Article 8.9.1 (Non-Conforming Measures), the existing measures of Australia that do not conform with some or all of the obligations imposed by:

(i) Article 8.2 (National Treatment);

(ii) Article 8.3 (Most-Favoured-Nation);

(iii) Article 8.4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iv) Article 8.5 (Cross-Border Trade); or

(v) Article 8.8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nd

(c) in Section B, pursuant to Article 8.9.2 (Non-Conforming Measures), the specific sectors, sub-sectors or activities for which Australia may maintain existing, or adopt new or more restrictive, measures that do not conform with the obligations imposed by:

(i) Article 8.2 (National Treatment);

(ii) Article 8.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iii) Article 8.4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iv) Article 8.5 (Cross-Border Trade); or

(v) Article 8.8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2. Each entry in Section A as described in subparagraph 1(b) sets out the following elements:

(a) **Sector** refers to the general sector for which the entry is made;

(b) **Obligations Concerned** specifies the oblig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b) that, pursuant to Article 8.9.1, do not apply to the listed measure(s);

(c) **Level of Government** indicates the level of government maintaining the listed measure(s);

(d) **Source of Measure** identifies the laws,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that are the source of the non-conforming measure for which the entry is made. A measure cited in the Source of Measure element:

(i) means the measure as amended, continued or renewed a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ii) includes any subordinate measure adopted or maintained thereunder; and

(e) **Description** sets out the non-conforming aspects of the measure for which the entry is made.

3. Each entry in Section B as described in subparagraph 1(c) sets out the following elements:

(a) **Sector** refers to the general sector for which the entry is made;

(b) **Obligations Concerned** specifies the oblig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c) that, pursuant to Article 8.9, do not apply to the sectors, sub-sectors, or activities listed in the entry;

(c) **Level of Government** indicates the level of government maintaining the listed measure(s); and

(d) **Description** sets out the scope of the sectors, sub-sectors, or activities covered by the entry.

4. For entries in Section A, in accordance with Article 8.9.1(a), the articles of this Agreement specified in the **Obligations Concerned** element of an entry do not apply to the measures identified in the **Description** element of that entry except to the extent the measure identified in the **Description** element is inconsistent with a Specific Commitment in Annex 8-B.

5. For entries in Section B, in accordance with Article 8.9.2, the articles of this Agreement specified in the **Obligations Concerned** element of an entry do not apply to the sectors, sub-sectors and activities identified in the **Description** element of that entry.

6. Where Australia maintains a measure that requires that a service supplier be a citizen, permanent resident or resident of its territory as a condition to the provision of a service in its territory, a listing for that measure taken in this Annex with respect to Articles 8.2 through 8.5 shall operate as a non-conforming measure with respect to Articles 11.3 (National Treatment– Investment), 11.4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Investment) and Article 11.9 (Performance Requirements– Investment), to the extent of that measure.

Headnotes

1. Commitments under Chapter 8 (Financial Services) are undertaken subject to the limitations and conditions set forth in these headnotes and the Schedule below.

2. To clarify Australia's commitment with respect to Article 8.4, juridical persons supplying financial services and constituted under the laws of Australia are subject to non-discriminatory limitations on juridical form[1].

3. Australia limits its commitments under Article 8.9.1(c) with respect to Article 8.4 in the following manner: Article 8.9.1(c) shall apply only to non-conforming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8.4(a) and not to those non-conforming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8.4(b).

4. For greater certainty, notwithstanding the listing of any reservation by Australia or Korea in Annex III, Australia may adopt or maintain measures for prudential reasons pursuant to Article 8.10. Australia's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subject to Article 8.10 shall not be affected by any listing by Korea in "Certain Measures Not Inconsistent With Article 8.2 or 8.4 or Subject to Article 8.10.1" in Annex III.

[1] For example, partnerships and sole proprietorships are generally not acceptable juridical forms for authorised depository institutions in Australia. This headnote is not itself intended to affect, or otherwise limit, a choice by a financial institution of the other Party between branches or subsidiaries.

ANNEX III
SCHEDULE OF AUSTRALIA

Section A

Sector:	Financial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8.2)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Article 8.4)
Level of Government:	Central
Source of Measure:	*Banking Act 1959* (Cth) *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1998* (Cth)
Description:	A branch of a foreign bank that is authorised as a deposit taking institution in Australia (foreign ADI) is not permitted to accept initial deposits (and other funds) from individuals and non-corporate institutions of less than $A250,000. A representative office of a foreign bank is not permitted to undertake any banking business, including advertising for deposits, in Australia. Such a representative office is only permitted to act as a liaison point.

Sector:	Financial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8)
Level of Government:	Central
Source of Measure:	*Corporations Act 2001* (Cth) *Corporations Regulations 2001 (Cth)*
Description:	At least two directors of a public company must be ordinarily resident in Australia. At least one director of a private company must be ordinarily resident in Australia.

Sector:	Financial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8.2)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 8.3)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Article 8.4) Cross-Border Trade (Article 8.5)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8.8)
Level of Government:	Regional
Source of Measure:	All existing non-conforming measures at the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Description:	All existing non-conforming measures at the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Sector:	Financial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8.2)
Level of Government:	Central
Source of Measure:	*Commonwealth Banks Act 1959* (Cth)
Description:	Liabilities of the Commonwealth Bank, previously Commonwealth Government-owned, are covered by transitional guarantee arrangements.

Section B

Sector:	Financial Service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8.2)
Level of Government:	Central and Regional
Description:	Australi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2] with respect to the guarantee by government of government-owned entities, including guarantees related to the privatisation of such entities, which may conduct financial operations.

[2] That is, measures that would b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Chapter 8 (Financial Services) under Article 8.1.3(b), except for the application of Australia's policy on competitive neutrality which in general allows competition and avoids providing a net competitive advantage to an entity by virtue of its public sector ownership.